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해설서(국문)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HS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해설]

(I) 이 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체계적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포괄하는 상품의 범주나 형태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표시하고 있는 표제가 주어진 부(部)·류(類)·절(節)에 이들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部)·류(類)에 분류하는 물품의 다양성과 많은 수로 인하여 이들 모두를 표제에 구분하여 포함시키거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II) 그러므로 통칙1의 서두에 표제는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표제는 분류에 관한 법률상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III) 통칙 제1호의 두 번째 부분에서 품목분류는

가. 호(號)와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 규정과

나.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통칙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III)가.항의 규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물품은 통칙을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도 분류가 된다[예: 제0101호의 살아있는 말, 제30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의료용품(제3006호)].

(V) (III)나.항에서 :

가. 각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란 호의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한다는 것(즉, 그것들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의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제31류의 주는, 이 류의 특정의 호는 특정의 물품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호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 “통칙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현에서 통칙 제2호를 언급한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불완전한 상태나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물품(예: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과
- (2)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예: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자전거로 모든 구성부품이 함께 제시한 경우)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거나(예: 타이어, 이너튜브)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통칙 제2호가목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 (I) 통칙 제2호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일반적으로 봉·디스크·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으로 보지 않는다.
- (III)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IV)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여러 경우는 부(部)나 류(類)의 총설에 예시하였다(예: 제16부·제61류·제62류·제86류·제87류·제90류).

통칙 제2호가목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

- (V) 통칙 제2호가목의 둘째 부분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하는 경우는 보통 포장·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 (VI)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한다.

(VII)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VI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는 부(部)나 류(類)(예: 제16부·제44류·제86류·제87류·제89류)의 총설에 언급하였다.

(IX)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칙 제2호나목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

(X) 통칙 제2호나목은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한 물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관계되는 호는 특정의 재료나 물질을 열거한 호(예: 제0507호의 아이보리)와 특정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한 것을 표시한 호[예: 제4503호의 천연의 코르크(cork) 제품]가 있다. 이 통칙은 호(號)나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註)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예: 제1503호의 라드 기름(lard-oil),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부(部)나 류(類)의 주(註)나 호(號)의 본문에서 규정한 조제 혼합물은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XI)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로 된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에 해당 재료나 물질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XII) 그러나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號)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까지도 포함하도록 해당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그 밖의 재료나 물질을 첨가함에 따라서 호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빼앗기는 물품의 경우에 생긴다.

(XIII) 이 통칙이 귀결로,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 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해설]

(I) 이 통칙은 통칙 제2호나목의 규정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일견(prima facie)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한 세 가지 분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이 통칙에 기술한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 제3호나목은 통칙 제3호가목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통칙 제3호가목과 나목의 두 규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가) 가장 구체적인 표현 ; (나) 본질적인 특성 ; (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의 순이다.

(II) 이 통칙은 **호의 규정과 부(部)나 류(類)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면, 제97류의 주 제5호나목은 어떤 물품이 제9701호에서 제9705호까지의 호(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와 제9706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의 각 호(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에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물품은 이 통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97류의 주 제5호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가목

(III)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가목에 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하므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전동공구로 보아 제8467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류해서는 안된다).

나. 만약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 더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후자범주의 물품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성형(成形)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가공되지 않은 것은 제8801호·제8802호나 제8806호의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제8807호에 분류하지 않고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V) 그러나, 둘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또는 복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또는 물질)의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에 관해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에,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나목과 제3호다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나목

(VI)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혼합물
-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들은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VII)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용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예:

- (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 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
- (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되어있다)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대체로, 이들 복합물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용기에 들어있다.

(X)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retail sale)”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a)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potato chip)[프렌치 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 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 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그러나, 통칙 제3호나목은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새우통조림(제1605호)· 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 치즈통조림(제0406호)· 얇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 각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이들 두 가지 예와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 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접시(saucer, 제6912호)가 판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것에도 적용한다.

(2)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제8510호)· 빗(제9615호)· 한 쌍의 가위(제8213호)· 브러시(제9603호)· 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자(제9017호)· 계산반(제9017호)· 제도용 컴퍼스(제9017호)· 연필(제9609호)· 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 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XI)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통칙 제3호다목

(XII)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통칙 제4호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해설]

- (I) 이 통칙은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에 관련된 것이다. 이 통칙은 이들 물품이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적당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II) 통칙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상, 제시된 물품이 어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을 유사한 물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물품은 그들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III) 물론 유사관계는 물품내용·특성·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다.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해설]

통칙 제5호가목
(케이스·상자 이와 유사한 용기)

- (I) 이 통칙은 다음과 같은 용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 (1)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이나 세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다. 어떤 용기는 그들이 수용하는 물품의 형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
 - (2)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물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하며(예: 운송 중이나 보관 중) ; 이 기준으로 인하여 이들 용기는 단순한 포장과 구분이 가능하고 ;
 - (3) 그들이 소요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하는 것(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분리하여 제시하는 용기는 그들이 적합한 호로 분류하고 ;
 - (4) 그러한 물품과 함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이고 ;
 - (5) 전체로 보았을 때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 (II)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용기로서 이 통칙에 의해 분류하여야 할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case)(제7113호) ;
 - (2) 전기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
 - (3) 쌍안경·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
 - (4) 악기의 케이스·상자·가방(예: 제9202호) ;
 - (5) 총 케이스(gun case)(예: 제9303호)
- (III) 예를 들면, 차가 담겨 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나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에는 이 통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칙 제5호나목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 (IV)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 재료나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예: 어떤 종류의 금속으로 만든 드럼이나 압축이나 액화가스용의 철강으로 만든 용기).
- (V) 이 통칙은 통칙 제5호가목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통칙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케이스(case)·박스과 유사한 용기의 분류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한다.

통칙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해설]

(I) 동일 호(號) 내 소호수준에서의 분류는 위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II) 통칙 제6호에서, 아래의 표현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가. “동일 수준의 소호” : 5단위 소호(레벨1)나 6단위 소호(레벨2)

따라서 통칙 제3호가목의 문맥상 하나의 호(號) 안에서 둘 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이나 유사성은 그 고려 대상인 5단위 소호들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5단위 소호가 선정되고 그 소호 자체가 다시 세분되는 경우에,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만, 6단위 소호들의 본문을 고려하여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 부(部)나 류(類)의 주가 소호본문이나 소호주와 상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것의 예는 제71류의 주 제4호나목에서 정한 “백금”의 범위가 제71류 소호주 제2호에서 정한 “백금”의 범위와 다른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호 제7110.11호와 7110.19호에서는 소호주 제2호가목이 적용되므로 류의 주 제4호나목은 무시하여야 한다.

(III) 6단위 소호의 범위는 그것이 속해 있는 5단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 5단위 소호는 그것이 속해 있는 4단위 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내통칙]

통칙 제7호(*)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
* *

* 대한민국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7호

제 1 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제 1 류

살 아 있 는 동 물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이 포함된다.
 - 가. 제0301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그 밖의 물품
 - 다. 제9508호의 동물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식용이나 그 밖의 용도)을 분류한다.

- (1)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2)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그 밖의 물품
- (3) 서커스·관람용 동물원이나 그 밖의 유사한 순회 동물쇼단(travelling animal show)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동물(**제9508호**)

운송 도중에 죽은 동물(곤충을 포함한다)은 그것들이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0201호부터 제0205호까지와, 제0207호, 제0208호나 제0410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01.01 - 살아 있는 말 · 당나귀 · 노새 · 버새(+)

- 말

0101.21 -- 번식용

0101.29 -- 기타

0101.30 - 당나귀

0101.90 - 기타

이 호에는 말(암컷의 말 · 번식용 말 · 거세한 말 · 새끼말 · 조랑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를 분류한다(야생이나 가축인지에 상관없다).

노새는 당나귀와 암컷 말과의 잡종이며, 버새는 번식용 말과 당나귀와의 교배종이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0101.21호

소호 제0101.21호에서 “번식용 동물(pure-bred breeding animal)”에는 소관 국가기관에서 “순종(pure-bred)”으로 간주하는 번식용 동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01.02 - 살아 있는 소(+)

- 축우(畜牛)

0102.21 -- 번식용

0102.29 -- 기타

- 버팔로

0102.31 -- 번식용

0102.39 -- 기타

0102.90 - 기타

(1) 축우(畜牛 : cattle)

이 범주에는 보스(*Bos*)속의 소과 동물들이 포함되는데, 네 가지의 하위 속, 즉, 보스(*Bos*)·비보스(*Bibos*)·노비보스(*Novibos*)와 포에파구스(*Poephagus*)로 나누어진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A) 보통의 소(*Bos taurus*)·혹소나 혹이 있는 소[humped ox(*Bos indicus*)]와 와츄시 소(Watussi ox)

(B) 비보스(*Bibos*)속의 아시아 소[예: gaur(*Bos gaurus*)·gayal(*Bos frontalis*)와 banteng(*Bos sondaicus*나 *Bos javanicus*)]

(C) 포에파구스(*Poephagus*)속의 동물들[예: 티베트 야크(*Bos grunniens*)]

(2) 버팔로(buffalo)

이 범주에는 부발루스(*Bubalus*)속·신세러스(*Syncerus*)속·비손(*Bison*)속의 동물들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A) 부발루스(*Bubalus*)속의 동물[인도 소나 물소(*Bubalus bubalus*)·아시아 물소(Asiatic buffalo)나 아니(*Bubalus arni*)와 셀리비즈 아노아(Celebese anoa)나 피그미 물소(*Bubalus depressicornis*나 *Anoa depressicornis*) 포함]

(B) 신세러스(*Syncerus*)속의 아프리카 물소류[예: 드와프(dwarf)물소(*Syncerus nanus*)와 큰 Caffrarian물소(*Syncerus caffer*)]

(C) 비손(*Bison*)속의 동물[즉, 아메리카 비손(*Bison bison*)과 “물소”와 유럽 비손(*Bison bonasus*)]

(D) 비팔로(Beeffalo)(bison과 가축용 고기소와의 교배종)

(3) **그 밖의 것**[네뿔영양(*Tetracerus quadricornis*)과 타우로트라구스(*Taurotragus*)와 트라젤라푸스(*Tragelaphus*)속의 나선 뿔 영양을 포함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0102.21호와 제0102.31호

소호 제0102.21호와 제0102.31호에서 “번식용(pure-bred breeding animal)”에는 소관 국가기관에서 “순종(pure-bred)”으로 간주하는 번식용 동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01.03 - 살아 있는 돼지(+)

0103.10 - 번식용

- 기타

0103.91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0103.92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이 호에는 가축용 돼지와 야생돼지(예: 멧돼지)를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0103.10호

소호 제0103.10호에서 “번식용”에는 소관 국가기관에서 “순종”으로 간주하는 번식용 동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소호 제0103.91호와 제0103.92호

소호 제0103.91호와 제0103.92호에서 특정하고 있는 중량한계는 동물 각 개개의 중량을 말한다.

01.04 - 살아 있는 면양과 염소

0104.10 - 면양

0104.20 - 염소

이 호에는 가축이나 야생 면양(수컷·암컷과 어린양)과 가축용 염소나 야생의 염소와 어린염소를 분류한다.

01.05 -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 ·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1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0105.12 -- 칠면조

0105.13 -- 오리

0105.14 -- 거위

0105.15 -- 기니아새

- 기타

0105.94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0105.99 -- 기타

이 호에는 오직 여기에 열거된 종류의 살아 있는 가금(家禽 : poultry)만을 분류하며, 닭(*Gallus domesticus*)에는 병아리와 거세한 닭을 포함한다. 그 밖의 조류(예: 자고새 · 꿩 · 비둘기 · 들오리 · 들거위)는 **제외한다(제0106호)**.



[소호해설]

소호 제0105.11호 · 제0105.12호 · 제0105.13호 · 제0105.14호 · 제0105.15호

소호 제0105.11호 · 제0105.12호 · 제0105.13호 · 제0105.14호 · 제0105.15호에서 특정하고 있는 중량한계는 조류 각 개개의 중량을 말한다.

01.06 -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 포유동물

0106.11 -- 영장류

0106.12 --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106.13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0106.14 -- 토끼

0106.19 -- 기타

0106.2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 조류

0106.31 -- 맹금류

0106.32 -- 앵무류[패럿류(parrot) · 패러키트류(parakeet) · 금강앵무류 ·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106.33 -- 타조와 에뮤(emu)[드로마이어스 노배 홀란드리아(*Dromaius novaehollandiae*)]

0106.39 -- 기타

- 곤충류

0106.41 -- 벌

0106.49 -- 기타

0106.90 - 기타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살아있는 가축이나 야생의 동물을 분류한다.

(A) 포유동물 :

(1) 영장류

(2)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 매너티(manatee)와 듀공(dugong)(바다소목의 포유동물) ; 물개 ·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walrus)[기각(鱗脚 : *Pinnipedia*)아목(亞目)의 포유동물]

(3) 그 밖의 포유동물[예: 순록 · 고양이 · 개 · 사자 · 호랑이 · 곰 · 코끼리 ·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 얼룩말 · 토끼 · 산토끼 · 사슴 · 영양(보비내(*Bovinae*)아과의 것들을 제외한다) · 서남아시아산의 영양 · 여우 · 멍크 · 모피목장용 동물]

(B)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C) 조류

- (1) 맹금류
- (2) 앵무류[파렛류(parrot) · 패러키투류(parakeet) · 금강앵무류 ·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 (3) 그 밖의 조류[예: 자고새 · 꿩 · 메추리 · 누른도요 · 도요 · 비둘기 · 뇌조 · 멧새 · 들오리 · 들거위 · 티티조 · 검은새 · 종달새 · 흰치 · 깨새(tits) · 벌새 · 공작 고니 · 제0105호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조류]

(D) 곤충류[예: 벌(이동용 상자나 우리나라 벌집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E) 그 밖의 동물(예: 개구리)

이 호에는 서커스 · 관람용 동물원이나 그 밖의 유사한 순회 동물쇼 용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동물은 **제외한다(제9508호)**.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脍肉)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1호부터 제0208호까지 또는 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나. 식용에 적합한 죽은 곤충(제0410호)

다. 동물의 장·방광·위(제0504호), 동물의 피(제0511호나 제3002호)

라. 제0209호의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총설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의 육[도체(屠體 : 동물의 몸통) - 머리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脍肉 : offal)과 육(肉 : meat)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肉)과 설육(脍肉)은 **제외한다(제0511호)**. 육(肉)이나 설육(脍肉)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도 **제외한다(제2301호)**.

설육(脍肉)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한다.

- (1) 주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예: 머리와 그 절단 육(肉)(귀를 포함한다)·발·꼬리·염통·혀·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대망막·목·흉선]
- (2)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담낭·부신·태반)
- (3) 식용이나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간·콩팥·허파·뇌·췌장·비장·척수·난소·자궁·불알·유방·갑상선·뇌하수체 등)
- (4) 식용이나 앞에서 설명한 이외의 용도(예: 가죽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껍질부분)

위의 (1)항에 열거된 설육(脍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은 이 류에 분류하지만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0511호**로 분류한다.

위의 (2)항에 열거된 설육(脍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그 밖에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에는 **제0510호**에 분류하며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로 분류한다.

위의 (3)항에 열거된 설육(脍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 의료용품 조제용으로 일시적인 저장이 된 경우에는 **제0510호**로 분류(예: 글리세롤·아세트·알코올·포름알데히드·붕산 나트륨 등에 저장한 것)
- (b)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
- (c)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0511호**로 각각 분류한다.

제1부
제2류

앞의 (4)항에 열거된 설육(脣肉)은 식용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2류로 분류하며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0511호**나 **제41류**로 분류한다.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과 위(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다)는 **제0504호**로 분류한다.

분리하여 제시하는 동물성지방은 **제외한다(제15류)**(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로서 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 비계류는 공업용에만 적합하다 할지라도 제0209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체(屠體)나 육(肉)에 붙은 채로 제시하는 비계는 육(肉)의 부분으로 간주한다.

이 류의 육(肉)과 설육(脣肉)과 제16류의 육(肉)과 설육(脣肉)의 구분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의 육(肉)과 설육(脣肉)을 분류한다(조리된 것은 제외한다).

- (1) 신선한 것[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肉)과 설육(脣肉)을 포함한다]
- (2) 냉장한 것(동결되지 않고 대략 0℃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
- (3) 냉동한 것(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
- (4) 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脣肉)도 이 류로 분류한다.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상태의 육과 설육(脣肉)은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 처리하거나 절단·다진 것(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로 분류한다. 그 이외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209호의 돼지 비계를 입힌 제0207호의 가금(家禽)류의 육(肉)]도 이 류로 분류한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않는 육(肉)과 설육(脣肉)은 **제16류**로 분류한다. 예:

- (a)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1601호**)
- (b) 어떤 방법으로 조리(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로 굽거나, 튀기거나 볶는 것)된 육(肉)과 설육(脣肉),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보존처리된 육(肉)과 설육(脣肉)[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松露: truffle)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육(肉)과 설육(脣肉)(**제1602호**)

또한 이 류에는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 상태의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脣肉)(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제1부
제2류**

이 류의 육(肉)과 설육(脣肉)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건육통조림)이라 할지라도 이 류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들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이 류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처리된 것으로서 **제16류**로 분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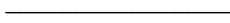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육(肉)과 설육(脣肉)이 공기조절 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쇠고기 육(肉)]로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소호해설]

뼈가 있는 것

“뼈가 있는 것(with bone in)”이란 뼈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거나 뼈의 일부가 제거된 육(肉)을 말한다(예: 정강이 뼈가 없는 햄과 반 정도 뼈가 제거된 햄). 이 소호에는 뼈를 제거한 후 다시 삼입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고기 조직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02.01 -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1.2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201.30 - 뼈 없는 것

이 호에는 제0102호의 가축소나 야생소의 신선한 고기나 냉장한 고기를 분류한다.

02.02 -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2.2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202.30 - 뼈 없는 것

이 호에는 제0102호의 가축소나 야생소의 냉동한 고기를 분류한다.

02.03 -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1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3.12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203.19 -- 기타

- 냉동한 것

0203.2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3.22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203.29 -- 기타

이 호에는 신선한 돼지고기, 냉장하거나 냉동한 돼지고기[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또 이 호에는 삼겹살(streaky pork)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와 고기 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한다.

02.04 - 면양과 염소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2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4.22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204.23 -- 뼈 없는 것

0204.3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4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4.42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204.43 -- 뼈 없는 것

0204.50 - 염소의 고기

이 호에는 면양(숫양·암양과 어린 면양)·염소나 어린염소의 신선한 고기, 냉장하거나 냉동한 고기를 분류한다(가축의 것이나 야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0204.10호와 제0204.30호

소호 제0204.10호와 제0204.30호에서 어린 면양의 고기(meat of lamb)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양에서 얻어진 고기를 말한다. 살코기는 살결이 좋고, 연분홍 붉은색을 띄고 또한 부드러운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도체(屠體)의 무게는 26kg 이하이다.

02.05 - 말 · 당나귀 · 노새 ·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신선한 고기 · 냉장하거나 냉동한 고기를 분류하며, 그것들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제0101호로 분류한다.

02.06 - 소·돼지·면양·염소·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脣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 소의 것(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21 -- 혀

0206.22 -- 간

0206.29 -- 기타

0206.3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 -- 간

0206.49 -- 기타

0206.80 - 기타(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9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식용 설육(脣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肉 : 귀를 포함한다]·발·꼬리·염통·유방·간·콩팥·어린 것의 췌장(홍선과 췌장)·뇌수·허파·목·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비장·혀·대망막·척수·식용껍질·생식기[자궁·난소와 고환(睾丸 : testis)]·갑상선·뇌하수체. 설육(脣肉)의 분류에 적용할 원칙에 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고한다.

02.07 -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脣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3 -- 절단육과 설육(脣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4 -- 절단육과 설육(脣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칠면조의 것

0207.24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25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26 -- 절단육과 설육(脣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27 -- 절단육과 설육(脣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오리의 것

0207.4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4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43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44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45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거위의 것

0207.5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5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53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54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55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60 - 기니아새의 것

이 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 : poultry)류(살아 있는 경우)의 육(肉)과 식용 설육(脣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금(家禽)류의 설육(脣肉)은 닭·거위나 오리의 간(liver)이다. 이러한 것들에는 거위나 오리의 “지방간(fatty liver)”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다른 간에 비해서 크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며 단단하며 지방(fatty)이 많다는 사실과 다른 간들은 대부분 어둡거나 밝은 적색인데 반해, 그것은 흰 다갈색에서부터 밝은 밤색까지 다채롭다는 점에 의해 구별한다.

02.08 -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脣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 - 토끼의 것

0208.30 - 영장류의 것

0208.40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208.5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208.6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0208.90 - 기타

이 호에는 제0106호로 분류하는 동물의 육과 설육(脣肉)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예: 집토끼·산토끼·개구리·순록·비버(beaver)·고래·수상거북(turtle)].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10 - 돼지의 것

0209.90 - 기타

이 호의 돼지 비계에는 살코기가 없는 비계만을 분류하며 ; 이러한 비계는 공업용에만 적합한 것이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형태의 육은 **제외한다**[예: 삼겹살과 이와 유사한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육(肉)과 육층(肉層 : layer of meat)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나 **제0210호**에 분류].

특히 이 호에는 주로 돼지 내장의 주위에 있는 비계를 포함하며, 기름을 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한 것은 **제1501호**로 분류한다.

집에서 기르거나 야생인 가금(家禽 : poultry, 예, 거위)의 비계로서 용출(溶出 : render)하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도 이 호에 분류하며 용출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한 비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01호)**.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비계는 **제외한다(제15류)**.

02.10 - 육과 식용 설육(脍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脍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돼지고기

0210.11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210.12 --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0210.19 -- 기타

0210.20 - 쇠고기

- 기타[육이나 설육(脍肉 : offal)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 -- 영장류의 것

0210.92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210.93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210.99 -- 기타

이 호에는 이 호에 열거된 방법으로 조제(調製)된 모든 종류의 육(肉)과 식용 설육(脍肉)을 분류하며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poultry)류의 비계로서 기름을 빼지 않은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제0209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삼겹살(streaky pork)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와 고기 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한다(단, 그들이 이 호에 규정한 대로 조제된 경우로 한정한다).

염장·건조(탈수나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훈제된 육(肉)[예: 베이컨·햄·숄더(shoulder)]는 장·위·방광이나 껍질이나 이와 유사한 케이싱(천연의 것이나 인조의 것)에 싸여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잘게 썰거나 잘게 부수어 다른 재료와 결합한 것(제1601호)이 **아니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脍肉)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도 해당한다. 그러나 육(肉)과 설육(脍肉)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예: 사료용) 여기서 **제외한다(제2301호)**.

해설서 제0206호의 규정은 이 호의 식용 설육(脍肉)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나 제0210호)
 -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 어란(魚卵)과 어백(魚白)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펠릿(pellet)(제2301호)
 - 라.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3.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는 식용에 적합한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은 포함하지 않는다(제0309호).

총설

이 류에는 살아있는 지에 상관없이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공업용(통조림 등)·부화용·관상용 등으로 제시한다. 다만,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liver)과 어란(魚卵: roe)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제5류)**.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한다. “냉동(frozen)”이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류에는 식용 어란(魚卵: roe)과 어백(魚白: milt)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조제·저장 처리하지 아니한 것이나, 단지 이 류에서 규정한 공정에 의하여 조제·저장처리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저장 처리된 식용 어란(魚卵: roe)과 어백(魚白: milt)이나, 캐비어나 캐비아 대용물로서 즉시 먹는데 적합한 것은 **제1604호**로 분류한다.

이 류의 물품과 제16류 물품의 구분

이 류에는 이 류의 각 호에 기술된 상태의 어류[간과 어란(魚卵: roe)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국한한다.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다진 것 등 처리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 류로 분류한다. 그 이외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306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부터 제0304호**까지의 어류)은 이 류로 분류한다.

제1부
제3류

반면에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 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로 분류한다[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 필레(fillet), 조리된 어류]. 그러나 훈제과정이나 훈제이전에 조리된 훈제한 어류와 훈제한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그리고 껍데기가 붙은 채로 단순히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은 갑각류는 각각 **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조리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은 **제0309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밀폐용기에 든 것이라도 이 류로 분류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예: 훈제 연어 통조림). 그러나 밀폐용기에 든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제16류**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로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또한 이 류에는 앞에서 설명한 제외 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0106호**의 포유동물
- (b)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肉)(**제0208호**나 **제0210호**)
- (c) 어류의 웨이스트(waste)와 비식용의 어란(魚卵 : roe)(예: 낚시의 미끼로 사용하는 염장한 대구의 알 등 (**제0511호**))
- (d)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제2301호**)

03.01 - 활어(+)

- 관상용

0301.11 -- 민물의 것

0301.19 -- 기타

- 그 밖의 활어

0301.91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1.92 -- 뱀장어[앙겔라(*Anguilla*)속]

0301.9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0301.94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301.95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301.99 -- 기타

이 호에는 그 고유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활어를 포함한다(예: 관상용).

이 호의 물고기는 그들이 살아있기에 적합하도록 그들 천연 환경에서의 것과 유사한 조건의 용기(예: 수족관 · 어항 등)에 넣어서 운송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호해설]

소호 제0301.11호와 제0301.19호

“관상용 어류(ornamental fish)”란 그들의 색이나 모양 때문에 보통 관상용(특히 수족관에서)으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한다.

03.02 -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연어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 0302.11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0302.13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 0302.14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0302.19 -- 기타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 0302.21 --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 0302.2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 0302.23 -- 서대[솔레아(*Solea*)속]
- 0302.24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 0302.29 -- 기타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위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 0302.31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 0302.3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 0302.3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위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 0302.3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 0302.35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 0302.36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 0302.39 -- 기타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 [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 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 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 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 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 (*Rastrelliger*)속], 삼치 [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 (*Trachurus*)속], 줄전갱이류 [카랑크스(*Caranx*)속],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꿈치 [콜로라비스 사이라 (*Cololabis saira*)], 가라지 [데캡테러스(*Decapterus*)속], 얼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 (*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 [유티 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 [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 치 [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 0302.4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0302.42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 0302.43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 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 0302.44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 0302.4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 0302.46 --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 0302.47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0302.49 -- 기타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 0302.5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0302.5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 0302.5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 0302.5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 · 유르피키스(*Urophycis*)속]
- 0302.5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 0302.56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 0302.59 -- 기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 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 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 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 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 나(*Channa*)속].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 0302.7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 0302.7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 0302.7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 0302.74 -- 뱀장어[앙길라(*Anguilla*)속]
- 0302.79 -- 기타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 0302.81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0302.82 -- 가오리와 흥어[라지대(*Rajidae*)과]
- 0302.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0302.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 0302.85 -- 돔[스파리대(*Sparidae*)과]
- 0302.89 -- 기타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
- 0302.91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 0302.92 -- 상어 지느러미
- 0302.99 -- 기타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통째로 된 것 · 머리가 없는 것 · 창자를 뺀 것이나 뼈나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이 어류는 운송 중 저장을 위하여 소금이나 얼음을 넣어 포장한 것이나 소금물을 뿌린 것도 있다.

가볍게 가당되거나 약간의 월계수(月桂樹)의 잎(bay leaf)으로 포장된 어류는 이 호로 분류한다.

어류의 간(肝) ·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milt)뿐 아니라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 설육[예: 어류 껍질 · 꼬리 · 부레(swim bladder) · 머리와 머리의 반쪽(골 · 볼떼기 · 혀 · 눈갈 · 턱이나 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위 · 지느러미 · 혀]도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0302.92호

제0302.92호의 "상어지느러미(shark fin)"에서 상어의 등지느러미 · 가슴지느러미 · 배지느러미 · 항문지느러미 · 꼬리지느러미의 하엽(下葉: lower lobe)을 분류한다. 그러나, 상어 꼬리의 윗부분은 상어지느러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03.03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연어과.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 0303.11 -- 소코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0303.12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 0303.13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0303.14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0303.19 -- 기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체[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체[카나(*Channa*)속].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 0303.2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 0303.24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 0303.25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 0303.26 --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 0303.29 -- 기타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키포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 0303.31 --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 0303.3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 0303.33 -- 서대[솔레아(*Solea*)속]
- 0303.34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 0303.39 -- 기타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0303.41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 0303.4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 0303.4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 0303.4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 0303.45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 0303.46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 0303.49 -- 기타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 [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 [스콤버모루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 [카랑크스(*Caranx*)속],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꽁치 [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 [데캡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 [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 [이스티오포리데(*Istiophoridae*)].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0303.5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0303.53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 0303.54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 0303.5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 0303.56 --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 0303.57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0305.59 -- 기타
 - 브레그마세로티데(*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데(*Euclichthyidae*)과 · 가디데(*Gadidae*)과 · 마이크로리데(*Macruridae*)과 · 멜라노니데(*Melanonidae*)과 · 메르루치데(*Merlucciidae*)과 · 모리데(*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데(*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0303.63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0303.64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 0303.65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 0303.66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 · 유르피키스(*Urophycis*)속]
0303.67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3.68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0303.69 -- 기타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81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303.82 -- 가오리와 흥어[라지대(*Rajidae*)과]
0303.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303.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0303.89 -- 기타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3.91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0303.92 -- 상어 지느러미
0303.99 -- 기타

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0303.92호

제0302.9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소호의 물품에 준용한다.

03.04 -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겔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 0304.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 0304.3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 0304.3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 0304.39 -- 기타
 -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 0304.4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0304.4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0304.43 -- 넙치류[플루로넥티데(*Pleuronectidae*)과 · 바디데(*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데(*Cynoglossidae*)과 · 솔레이데(*Soleidae*)과 · 스코프탈미데(*Scophthalmidae*)과 · 시타리데(*Citharidae*)과]
- 0304.44 -- 브레그마세로티데(*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데(*Euclichthyidae*)과 · 가디데(*Gadiidae*)과 · 마크로우리데(*Macrouridae*)과 · 멜라노니데(*Melanonidae*)과 · 메르루치데(*Merlucciidae*)과 · 모리데(*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데(*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 0304.45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0304.46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0304.47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0304.48 -- 가오리와 홍어[라지데(*Rajidae*)과]
- 0304.49 -- 기타
 -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 0304.5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겔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0304.52 -- 연어과
- 0304.53 -- 브레그마세로티데(*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데(*Euclichthyidae*)과 · 가디데(*Gadiidae*)과 · 마크로우리데(*Macrouridae*)과 · 멜라노니데(*Melanonidae*)과 · 메르루치데(*Merlucciidae*)과 · 모리데(*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데(*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 0304.5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0304.5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0304.56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304.57 -- 가오리와 흥어[라지대(*Rajidae*)과]
 0304.59 -- 기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랩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6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0304.6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0304.6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304.69 -- 기타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7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304.7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304.7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304.7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 · 유르피키스(*Urophycis*)속]
 0304.7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79 -- 기타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8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304.8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d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4.8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0304.8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304.8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304.86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304.87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0304.88 --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흥어[라지대(*Rajidae*)과]
 0304.89 -- 기타

- 그 밖의 냉동한 것

- 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0304.9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0304.94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 0304.96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0304.97 -- 가오리와 흥어[라지대(*Rajidae*)과]
- 0304.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 것을 분류한다 :

(1) 어류의 필레(fillet)

이 호에서 “어류의 필레(fillet)”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 · 내장 · 지느러미(등지느러미 · 뒷지느러미 · 꼬리지느러미 · 배지느러미 · 가슴지느러미)와 뼈(척추나 등뼈 · 복부나 늑골의 뼈 · 아가미의 뼈나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 · 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 · 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이나 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들 물품의 분류는 어류의 껍질의 존재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로 필레(fillet)의 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나 후속의 슬라이싱(얇게 저밌 : sli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껍질을 남겨둔다.

조각으로 자른 필레(fillet)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조리한 필레(fillet)와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계1604호**로 분류한다.

(2) 그 밖의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즉, 어육에서 뼈를 제거한 것. 어류 필레(fillet)의 경우처럼 어육의 분류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

이 호에는 오직 다음 상태의 어류 필레(fillet)와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에 상관없다)만을 분류한다.

- (i)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운송 중 일시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이나 얼음을 넣어 포장한 것이나 소금물을 뿌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 (ii) 냉동한 것, 흔히 냉동블록 상태로 제시한다.

가볍게 가당되거나 약간의 월계수(月桂樹)의 잎(bay leaf)으로 포장된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이 호로 분류한다.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0305.20 - 어류의 간·어란(魚卵)·어백(魚白)(건조한 것·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 0305.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0305.32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리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 0305.39 -- 기타
-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0305.4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0305.4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0305.43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0305.4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0305.49 -- 기타
-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 0305.5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0305.52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0305.53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 0305.54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킴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킴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루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캡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oridae*)]
- 0305.59 -- 기타
-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 0305.6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0305.62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0305.63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 0305.6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루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루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렵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0305.69 -- 기타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脣肉)
- 0305.71 -- 상어 지느러미
- 0305.72 -- 어류의 머리 · 꼬리 · 부레
- 0305.7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어류[통째로 된 것 · 머리를 제거한 것 · 토막으로 된 것 · 필레(fillet)나 잘게 썰은 것]와 식용 어류 설육(脣肉)을 분류한다

- (1) 건조한 것 ;
- (2) 염장한 것 ; 염수장한 것 ; 또는
- (3) 훈제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하는 소금에는 아질산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이 추가로 함유될 수 있다. 이 호의 어류의 분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소량의 설탕이 염장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이들 공정을 거친 어류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 이전이나 훈제[온훈법(溫燻法 : hot smoking)] 중에 육(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어떤 다른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의 범위 내의 방법으로 조제되는 주요한 여러 가지 어종은 정어리·안초비(멸치류)·밴댕이·말라깽이·다랑어·고등어·연어·청어·대구·해덕과 넙치 등이다.

어류의 간·어란(魚卵)과 어백(魚白),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눈·턱이나 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으로서 건조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훈제한 것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비식용의 어류 설육(屑肉)(예: 산업적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과 어류 웨이스트(waste)(**제0511호**)
- (b) 조리한 어류(훈제한 어류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규정을 따른다)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어류 [예: 오일이나 식초나 마리네이드(marinade)로 보존처리한 것]와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물(**제1604호**)
- (c) 어류 수프(**제2104호**)



[소호해설]

소호 제0305.71호

제0302.9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소호의 물품에 준용한다.

이 소호에는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어지느러미로서 단순히 건조시킨 것과 건조시키기 전에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껍질을 벗긴 것이나 조각을 낸 상어지느러미(shark fin)의 부분을 포함한다.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냉동한 것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 · 파누리루스(*Panulirus*)속 · 자수스(*Jasus*)속]

0306.1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306.14 -- 게

0306.15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306.16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0306.17 -- 그 밖의 새우류

0306.19 -- 기타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6.3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 · 파누리루스(*Panulirus*)속 · 자수스(*Jasus*)속]

0306.3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306.33 -- 게

0306.3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306.35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0306.36 -- 그 밖의 새우류

0306.39 -- 기타

- 기타

0306.9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 · 파누리루스(*Panulirus*)속 · 자수스(*Jasus*)속]

0306.9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306.93 -- 게

0306.9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306.95 -- 새우류

0306.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 (2) 갑각류로서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이거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은 채로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은 것(소량의 화학 보존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 경우도 있다.

갑각류의 주요한 종류는 바닷가재 · 닭새우 · 가재 · 게 · 새우 · 보리새우 등이 있다.

이 호에는 갑각류의 부분(예: 바닷가재나 가재의 꼬리, 게의 집게발)을 분류한다. **다만**,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1)에 열거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제0308호**의 성계와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b)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부분을 포함한다)(예: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제1605호**)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혼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혼제 전이나 혼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굴

0307.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12 -- 냉동한 것

0307.19 -- 기타

- 가리비와 그 밖의 껍티니대(*Pectinidae*)과의 연체동물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22 -- 냉동한 것

0307.29 -- 기타

- 홍합[미틸루스(*Mytilus*)속·페르나(*Perna*)속]

0307.3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32 -- 냉동한 것

0307.39 -- 기타

-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42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43 -- 냉동한 것

0307.49 -- 기타

- 문어[옥토퍼스(*Octopus*)속]

0307.5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52 -- 냉동한 것

0307.59 -- 기타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 클램(clam), 새 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Arctidae*)과·카르디대(*Cardiidae*)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tellidae*)과·마르크트리대(*Macluridae*)과·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베네리대(*Veneridae*)과]

0307.7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72 -- 냉동한 것

0307.79 -- 기타

-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과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0307.81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 0307.82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0307.83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 0307.84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0307.87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 0307.88 --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기타
-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0307.92 -- 냉동한 것
- 0307.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대표적인 종류는 굴·가리비·홍합·갑오징어·오징어·문어·달팽이·클램·새조개·피조개·전복·수정고둥류이다.

이 호에는 또한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의 부분(part)도 분류한다. 단, 위의 (1)이나 (2)에서 규정한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굴 치패(稚貝)(양식용의 새끼굴)도 분류한다.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예: 끓는 물에 조리하거나 식초로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제1605호).

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ioidea*)]

0308.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8.12 -- 냉동한 것

0308.19 -- 기타

- 성게[스트롱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속·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0308.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8.22 -- 냉동한 것

0308.29 -- 기타

0308.3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

0308.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갑각류와 연체동물 이외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훈제한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주요한 종류에는 성게·해삼(beche-de-mer)과 해파리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부분(part)도 분류한다(예: 성게의 생식선). 단, 위의 (1)이나 (2)에서 규정한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예: 물에 삶거나 식초로 보존처리한 수생무척추동물)(제1605호).

03.09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9.10 -- 어류의 것

0309.90 -- 기타

이 호에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거친 가루와 펠릿을 분류한다(조리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가루와 거친가루로서, 탈지(脫脂)(예: 용제추출법에 의해)나 열처리를 거친 것은 여기에 분류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펠릿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2301호).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全乳)나 탈지(脫脂)유[일부 탈지(脫脂)나 완전 탈지(脫脂)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0403호에서 요구르트는 농축하거나 향을 첨가할 수 있으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과실·견과류·코코아·초콜릿·향신료·커피나 커피 추출물·식물·식물의 부분·곡물이나 베이커리 제품을 함유할 수도 있다. 다만 첨가된 물질이 밀크 성분의 전부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되고, 전체 물품은 요구르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제0405호에서
 - 가. “버터”란 오로지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 버터(신선한 것, 소금을 첨가한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 유(無脂 乳)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인체에 무해한 유산균 배양체를 함유하기도 한다.
 - 나.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5.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죽은 곤충(제0511호)
 - 나.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표시한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 다. 하나 이상의 천연밀크 성분(예: 버티르 지방)을 다른 물질(예: 올레 지방)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
 - 라.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과 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6. 제0410호에서 “곤충”이란 식용에 적합한 죽은 곤충의 전체나 일부분으로 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과 곤충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곤충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부).



소호주:

1.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0405.10호의 “버터”는 탈수한 버터나 버터기름이 포함되지 않는다(소호 제0405.90호).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 낙농품

- (A) **밀크**, 즉 전유(全乳 : full cream milk)와 일부 탈지(脫脂)한 밀크나 완전 탈지를 한 밀크
- (B) **크림**
- (C) **버터밀크 · 응고밀크와 크림 · 요구르트 · 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 (D) **유장(乳醬 : whey)**
- (E)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F)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 (G) **치즈와 커드(curd)**

위의 (A)항부터 (E)항까지의 물품에는 천연 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극소량의 산화방지제나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 · 구연산삼나트륨 및 염화칼슘)를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밀크는 가공에 필요한 소량의 화학물질(예: 탄산수소나트륨)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물품은 점결(粘結)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 · 비정질 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

이 류의 주 제4호나목에서 “부티르지방(butyric fat)”은 유지방(乳脂肪)을 의미하며 “올레지방(oleic fat)”은 유지방(乳脂肪) 이외의 지방으로서 특히 식물성 지방(예: 올리브 기름)을 의미한다.

또한, 유장(乳漿)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무수유당(無水乳糖 : anhydrous lactose)을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나타난 유당(乳糖 : lact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유당의 중량비율 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dry matter)”는 자유수(free water)와 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두 가지 모두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낙농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특히 **제1901호**)
- (b) 하나 이상의 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butyric fat)]을 그 밖의 물질(예: 올레 지방)로 치환함에 따라 밀크로부터 얻는 제품(**제1901호**나 **제2106호**)
- (c)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제2105호**)
- (d) **제30류**의 의약품
- (e) 카세인(casein)(**제3501호**), 밀크알부민(milk albumin)(**제3502호**)과 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제3913호**)

(II) 새의 알과 알의 노른자위

(III) 천연 꿀

(IV) 곤충과 그 밖의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0401.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0401.4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0401.5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이 호에는 크림(cream)과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밀크(milk)를 분류하며 살균·멸균 처리나 그 밖의 보존처리한 것·균질화 하거나 펩토나이즈(peptonised)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 그러나 농축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밀크와 크림(제0402호), 응고·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은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의 총설에 열거된 냉장한 것일 수도 있고, 첨가제를 넣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천연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조성을 갖도록 재구성한 밀크와 크림을 분류한다.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2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402.29 -- 기타

- 기타

0402.9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402.99 -- 기타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

분유는 특히 정상적인 상태로 용이하게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전분(전 중량의 5% 이하)이 함유된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응고·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

(b) 코코아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제2202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0402.10호·제0402.21호와 제0402.29호

이들 소호에서는 응고유와 페이스트(paste) 상태의 크림을 **제외한다**(소호 제0402.91호와 제0402.99호).

04.03 - 요구르트,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20 - 요구르트

0403.90 - 기타

이 호에는 버터밀크·모든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하며, 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으며, 농축(예: 증발하거나 블록 모양·가루·알갱이 모양)하거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이 호의 발효한 밀크는 육제품 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 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제0402호의 밀크 가루로 구성된 것도 있다.

이 호에 해당되는 산성화된 밀크는 수분으로 재구성한 응고유를 만들기 위해서 소량의 결정 모양의 산(레몬주스를 포함한다)을 첨가한 제0402호의 분유를 함유할 수도 있다.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향미료·과실(과육과 껍을 포함한다)·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요구르트는 초콜릿·향신료·커피나 커피 추출물·식물·식물의 부분·곡물이나 베이커리 제품을 함유할 수도 있다. 다만, 이들 물질 중 어떤 것도 밀크 성분의 전부나 일부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전체 물품은 요구르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04.04 -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90 - 기타

이 호에는 유장(乳漿 : whey)(즉,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이나 보존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조성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

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의 가루 상태의 제품[특히 유장(乳漿)]은 육제품 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 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탈지유나 천연밀크와 량과 질이 동등한 조성을 가진 재구성 밀크(**제0401호**나 **제0402호**)
- (b) 유장 치즈(**제0406호**)
- (c) 유장에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乳糖 : lactose)[무수유당(無水乳糖 : anhydrous lact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 (d)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식품(특히 **제1901호**)
- (e)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과 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04.05 -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 버터

0405.2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버터

이 그룹은 천연버터·유장버터와 환원버터(신선한 것, 소금을 첨가한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 버터는 오로지 밀크에서 얻어져야 하며 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 이상 95% 이하이고, 무지유(無脂乳) 고형분의 최대 함유량이 전 중량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인체에 무해한 유산균을 함유하기도 한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또한 염소나 면양에서 얻은 버터도 이 그룹에 포함한다.

(B)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즉, 유중수적(油中水滴 : water-in-oil)형의 스프레더블에멀전(spreadable emulsion)을 분류한다. 데어리 스프레드는 물품 중의 지방성분으로서 유지방만을 함유하여야 하는데 유지방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39% 이상 80% 미만으로 되어 있다(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데어리 스프레드는 선택에 따라 다른 성분(예: 무해한 유산균·비타민·염화나트륨·당류·젤라틴·전분 ; 식용색소 ; 향미제 ; 유화제 ; 농화제와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기도 한다.

(C)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예: 유지방·버터지와 버터유)을 분류한다. 버터유는 버터나 크림에서 수분과 무지 함유분을 추출함으로써 얻는 물품이다.

또한 이 그룹은 탈수한 버터와 버터 기름(흔히 물소와 암소의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버터의 일종)를 포함하며 아울러 버터와 소량의 허브·향신료·향미료·마늘 등의 혼합물품(다만, 이들 혼합물품이 이 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유지방 이외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거나 유지방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그 함유량이 39% 미만인 지방 스프레드(spread)는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1517호나 제2106호).

04.06 - 치즈와 커드(curd)(+)

-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 0406.2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 0406.4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 0406.90 - 그 밖의 치즈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 (1) 신선한 치즈[유장(乳漿 : whey)이나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Ricotta) · 브로씨오(Broccio) · 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 · 크림치즈 · 모짜렐라].
- (2)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치즈
-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 · 소금 · 양념 · 향미료 · 색소 · 물)을 열과 유화제나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 · 혼합 · 용융과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 (4)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 (5) 연성치즈(예: 카망베르와 브리)
-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체다 · 고다 · 그루에르 · 파르메잔)
유장(乳漿)치즈는 유장(乳漿)을 농축해서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어진다. 이들은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a)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5% 이상이고 ;
 - (b)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 85% 이하이고 ;
 - (c)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치즈에 육(肉) · 어류 · 갑각류 · 허브 · 향신료 · 채소 · 과일 · 너트 · 비타민 · 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치즈는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리 조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0406.40호

이 소호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특성이나 거래 품명을 가진 치즈 뿐만 아니라 치즈의 몸체(body)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바인(vein)(색상이 청색, 녹색, 녹색계 청색이나 백색계 회색일 수 있다)를 가진 치즈를 분류하며, 여기에는 블루 도베르뉴(Bleu d'Auvergne)·블루 드 코스(Bleu de Causses)·블루 드 케르시(Bleu de Quercy)·블루체셔(Blue Cheshire)·블루돌셋(Blue Dorset)·블루 웬슬리데일(Blue Wensleydale)·카브랄레즈(Cabrales)·데니쉬블루(다나블루) [Danish Blue(Danablu)]·고르곤졸라(Gorgonzola)·미셀라(Mycella)·로크포르(Roquefort)·상고롱(Saingorlon)·스틸턴(Stilton)이 포함된다.

04.07 -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화용 수정란

0407.1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407.19 -- 기타

- 그 밖의 신선란

0407.2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407.29 -- 기타

0407.90 - 기타

이 호에는 부화용 수정란과 그 밖의 신선한(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모든 새의 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하거나 조리한 알(卵 : egg)을 분류한다.

04.08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찌른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알의 노른자위

0408.11 -- 건조한 것

0408.19 -- 기타

- 기타

0408.91 -- 건조한 것

0408.99 -- 기타

이 호에는 모든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찌른 것·성형한 것(예: 원통형의 “long egg”)·냉동하거나 그 밖의 보존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식용이나 공업용(예: 유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난황유(**제1506호**)

(b) 조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새의 알 조제품(**제2106호**)

(c) 레시틴(lecithin)(**제2923호**)

(d) 분리된 알의 흰자위(egg albumin)(**제3502호**)

04.09 - 천연꿀

이 호에는 벌[아피스 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기원·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인조꿀·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1702호)**.

04.10 - 곤충과 그 밖의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10.10 - 곤충

0410.90 - 기타

이 호에는 곤충(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한 것)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죽은 곤충(고운가루와 거친가루를 포함한다)은 **제0511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에 포함한다.

- (1) **거북알** : 이것은 강이나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낳는 알이며 신선한 것 · 건조하거나 그 밖의 보존처리가 된 것도 있다.

거북알의 기름(turtle-egg oil)을 **제외한다(제1506호)**.

- (2) **살랑갠 등지**(“새의 등지”) : 이것은 살랑갠(칼새의 일종)이 분비하는 물질(공기에 닿는 순간 응고된다)로 만들어진다.

이 등지는 처리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식용에 적합하도록 깃털 · 먼지와 그 밖의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희끄무레한 스트립 모양이나 실(thread) 모양으로 되어 있다.

살랑갠 등우리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높고, 거의 수프나 그 밖의 조제(調製)식품(food preparation)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동물의 피(식용에 적합한지 또한 액체 상태이거나 건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0511호 · 제3002호)**.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 액체 상태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는 제외한다) ;
 -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제41류·제43류).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0511호에 해당하는 생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
 - 다. 동물성 방직용 섬유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11부) ; 또는
 - 라.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9603호).
2. 사람 머리카락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코뿔소의 뿔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ivory)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의 털”이란 마속동물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제0511호는 특히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층상으로 하였는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총설

이 류에는 가공하지 않았거나 간단한 조제 공정을 거친 여러 가지의 동물성 재료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것(동물의 피·장·방광·위를 제외한다)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동물성 지방(제2류나 제15류)
- (b)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제2류)이나 어류의 껍질(제3류)(조리된 경우 이러한 껍질류는 제16류에 분류한다)
- (c) 식용의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swim bladder)와 그 밖의 식용의 어류설육(제3류)
- (d) 장기요법용(臟器療法用 : organo-therapeutic)의 선(腺 : gland)이나 장기(臟器 : organ)로서 건조한 것(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0류)
- (e) 동물성 비료(제31류)
- (f) 원피(原皮 : raw hide and skin)[깃털이나 솜털이 붙어있는 새의 가죽(鳥皮 : birdskin)과 그 일부분으로서 미가공·세척·소독이나 저장에 필요한 처리가 된 것은 제외하나 그 밖의 가공이 된 것은 포함한다](제41류)
- (g) 모피(제43류)
- (h) 견(絹)·양모와 그 밖의 동물성의 직물용 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11부)
- (ij) 천연진주·양식진주(제71류)

05.01 -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이 호에는 세척하거나 세정한 것인지 상관없이 가공하지 않은 사람의 머리카락(가지런하지만 모발 끝부분끼리 각각 맞도록 정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과 그 웨이스트를 분류한다.

단순한 세척 이상의 공정, 예를 들면, 숙은 것·염색·표백이나 동그랗게 말았거나(curled) 부분 가발이나 전체 가발(wig) 등의 조제에 공하도록 조제된 사람 머리카락[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과 모근부분과 끝부분끼리 가지런하게 정리된 사람 머리카락은 **제외한다(제6703호 해설서 참조)**. 이 제외규정은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waste)는 예를 들면, 표백이나 염색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濾過布)(**제5911호**)
- (b)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제6505호**)
- (c)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제6704호**)

05.02 - 돼지털 · 멧돼지털 · 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 - 돼지털 · 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90 - 기타

이 물품들은 벌크(bulk) 모양이나 꾸러미 모양, 나란히 정리되고 모근부분이 다소 가지런하게 된 것으로서 다발로 묶은 형태의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은 가공하지 않은 원래 모양의 것이나 세척 · 표백 · 염색이나 소독된 경우도 있다.

그 밖의 브러시 조제용의 모에는 스킵크, 다람쥐와 담비의 털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된 털은 **제외하며**(예: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결합시켜서 비나 브러시가 될 수 있도록 묶음으로 만든 것이거나 비나 브러시를 제조하기 위하여 약간의 경미한 공정만을 필요로 하도록 된 것) ; 이들은 **제9603호**에 해당한다(제96류의 주 제3호 참조).

[05.03]

05.04 -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동물의 모든 장(腸)·방광과 위(제0511호에 해당되는 어류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전체나 부분이 식용이거나 아닌 것에 상관없이,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에 한정한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물품이라면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16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송아지나 새끼염소 등의 제4위(胃 : rennet bag)(절단이나 건조된 것에 상관없다) ; 이들은 유응결효소(乳凝結酵素)의 추출(抽出)에 사용한다.
- (2) 반추동물의 위벽(특히 솟소)과 반추동물의 제1위(胃)(조리된 것은 16류에 분류한다)
- (3) 가공되지 않은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황소나 양의 맹장의 외피)

이 호에는 또한 장(腸)과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특히 황소의 것)을 길이로 쪼개거나 길고 가느다란 조각 모양으로 절단한 것도 포함되며 내막을 긁어서 제거된 것을 불문한다.

장은 주로 소시지 케이싱으로 사용하며 또한 살균한 외과수술용 캣거트(catgut)(제3006호), 테니스 라켓의 줄(제4206호)과 악기의 현(弦)(제9209호)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가죽(皮)섬유의 페이스트(paste)를 추출하여 포르말데히드와 페놀의 용액으로 경화시켜 만든 인조거트(gut)(제3917호)와 분리된 천연거트(gut)를 아교로 붙여서 만든 인조거트(gut)(제4206호)는 제외한다.

05.05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050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예: 머리·날개)
- (2)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

이들은 가공하지 않거나 단지 세척·소독·보존처리가 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박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새의 깃털과 그 부분의 가루·거친 가루와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깃털로 된 침대용·장식용(보통 추가 조제 후에)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분류의 목적상 서로 다른 새의 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호에 해당하는 새의 깃털 부분에는 길이를 따라 분리한 깃털, 깃촉과 깃대에서 잘라내거나 얇게 깎아 부착된 바늘 모양의 것(barb)(가장자리를 정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깃촉과 깃대를 포함한다.

소매용 포대에 포장된 것과 명확하게 방석이나 베개 속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새의 깃털과 솜털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한데 묶은 새의 깃털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규정한 방법 이상으로 가공(예: 표백·염색이나 곱슬곱슬하게 하였거나 물결무늬를 한 것)되었거나 박제한 새의 가죽과 그 밖의 조류의 부분·새의 깃털과 그 부분이나 새의 깃털로 만든 제품 등은 **제외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제6701호**에 분류한다(그 호에 관한 해설서 참조). 가공된 깃촉과 깃촉의 제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닭시의 찌(**제9507호**)·이쑤시개(**제9601호**)].



[소호해설]

소호 제0505.10호

“충전재용 깃털(feather of a kind used for stuffing)”이란 가금(家禽)류(특히 거위이나 오리)·비둘기·자고새나 이와 유사한 새들의 깃털을 말한다(단, 길다란 날개나 꼬리털과 등외품의 깃털은 제외한다). “솜털”은 특히 거위나 오리의 깃털 중에서 부드럽고 고운 것으로서 깃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깃털과 구분한다. 이와 같은 깃털과 솜털은 침구류나 쿠션과 절연복(예: 아노락)과 같은 물품의 충전재로 주로 사용한다.

**05.06 -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90 - 기타

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와 젤라틴 제조용이나 비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뼈(bone)와 혼코어(horn-core)**(뿔의 속뼈)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탈지(脫脂)한 것(여러 가지 공정에 의하여 지방을 제거한 것)
- (2) **단순히 정리한 뼈(특정의 모양으로 깎지 않은 것)**, 즉,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히 톱으로 썰거나 절단(종이나 횡으로)한 것이나 표백하거나 때로는 거칠게 깎은 정도로서 그 이상의 가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판(板) 모양·시트 모양과 그 밖의 특정 모양의 것(광택을 내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뿔가루를 주형(鑄型)에 박아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와 같은 모든 물품은 **제9601호**나 그 밖의 보다 특정된 호에 분류한다.
- (3) **산(酸)처리된 뼈**, 즉, 염산에 의하여 석회질의 부분이 용해되고 본래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단지 용이하게 젤라틴으로 변할 수 있는 세포조직과 연골부분(오세인)만을 유지하고 있는 뼈
- (4) **탈교(脫膠)한(degelatinised) 뼈**. 증기에 의하여 교질이 제거된 뼈로서 보통 가루 모양으로 되어 있다(steam bone flour).
- (5) **뿔가루와 뼈 웨이스트(waste)**(잘게 부순 뼈를 포함한다)(예: 뼈 가공할 때 생기는 것)

05.07 - 아이보리(ivory) · 귀갑(龜甲) · 고래수염과 그 털 · 뿔(horn) · 사슴뿔 · 발굽 · 발톱 · 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1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품을 분류한다(가공하지 않은 것 · 단순히 정리한 것이나 특정한 모양으로 깎지 않은 것, 즉 줄로 쓸거나 · 조각내거나 · 세척 ·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 정돈 · 분할 · 본연의 형태 이외로 깎기 · 거친 대패질 · 정리나 평편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A) 아이보리(ivory)

이 표 전체에 걸쳐서 ‘아이보리’란 다음의 골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 코끼리 · 하마 · 바다코끼리 · 일각(一角) 고래나 산돼지의 엄니
- (2) 코뿔소의 뿔(犀角)
- (3) 모든 육상동물(陸上動物)이나 바다에서 사는 동물(海棲動物)의 이(齒)

(B) 귀갑(龜甲)

상거래 관습상의 귀갑(龜甲)(tortoise-shell)은 보통 수상거북의 껍데기(일반적으로 Kemp’s Turtle · Loggerhead와 Hawksbill Turtle로 알려진 종으로부터 얻어진다)이며, 귀갑(龜甲)에는 수상거북의 껍데기(turtle shell)를 포함한다.

귀갑(龜甲 : tortoise-shell)은 판 모양의 각질로서 여러 가지의 크기와 두께를 가지며 동물의 몸을 에워싸는 골격을 보호한다.

이 호에서 “귀갑(龜甲)”에는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1) **외피**(전체나 부분)
- (2) **비늘 모양의 귀갑** : 일반적으로 어장(漁場)에서 분리되며 표면이 약간 휘어진 불균일한 두께의 판(板) 모양으로 되어 있다. 비늘 귀갑(龜甲)은 그것이 얻는 귀갑(龜甲)의 부분에 따라서 **도슬(dorsal : 등부분)**이나 **벤트럴(ventral : 배부분)**로 불리워지며 복부와 가슴을 싸고 있는 부분은 **복갑(腹甲 : plastron)**으로 알려져 있다.

(C) 고래수염과 그 털

고래수염(고래나 그 밖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구부러진 각질(角質)의 날(blade)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는 회색 피(皮)가 붙어있고 내측에는 **고래수염과 그 털**과 동종물질로 이루어진 술 fringe)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D) 뿔 · 사슴뿔 · 발굽 · 발톱 · 부리

이 그룹의 **뿔**은 뿔 내부에 들어있는 골심(骨芯)과 앞이마 부분의 뿔이 있거나 혹은 없이 제시될 수 있다. **사슴뿔(antler)**은 사슴(deer), 엘크(elk) 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제품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페어링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제1부
05.07

이 호에서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막대 모양·튜브나 그 밖의 반제품(semi-finished) 형태로 절단한 물품과 주형으로 찍어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제9601호나 그 밖의 더 상세히 열거한 호 참조)**.

05.08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산호(coral)는 바다에 사는 폴립(marine polyp)의 석회질골격으로서 일반적으로 신변장식용품 세공용으로 사용한다.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패각(貝殼)은 진주 모패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가공하지 않은 산호(coral, unworked)**나 단지 외각(外殼)만 제거된 산호
- (2) **단순히 정리된 산호(coral, simply prepared)**로서 더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즉 단순히 절단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산호
- (3) **가공하지 않거나 단순히 정리한 패각(貝殼 : shells, unworked or simply prepared)**으로서 특정의 모양으로 깎지 않은 것. 즉, 세척하거나 단순히 절단하는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패각(貝殼)

이 호에는 오징어 뼈·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부수거나 가루로 된 껍데기와 그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한다.

한편 이 호에는 광택을 내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에 상관없이 봉 모양·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판 모양이나 그 밖의 특정한 모양의 것은 **제외하며** 이들은 **제9601호**나 그 밖의 특정 호에 분류한다.

[05.09]

05.10 - 용연향(ambergris) · 해리향(castoreum) · 시뵈(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 (신선한 것, 냉장 · 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용연향(龍涎香 : ambergris) : 향유고래(Sperm whale)가 분비하는 물질로서 동심(同芯)의 층을 이루는 둥글둥글한 덩어리 모양으로 발견되며 중량은 100kg까지 나가는 것이 있다. 이것은 왁스 상태이며 비비면 감미로운 향기가 난다. 색깔은 회색으로부터 흑색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비중은 물보다 작다. 용연향(龍涎香)은 **제2530호**에 해당되는 광물성수지인 황색의 호박(琥珀)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해리향(海狸香 : castoreum) : 쓴 맛과 대단히 매운 냄새를 가진 갈색 · 적색이나 황색의 수지성(樹脂性) 물질이다. 이는 비버(beaver)의 분비물로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형성되는 향낭(香囊)(보통 끝이 묶여 있다)에 들어 있는 채로 제시된다. 이들 향낭(香囊)은 때로는 쭈글쭈글하고 길이는 5cm부터 10cm까지 정도이다.

시뵈(civet) : 사향고양이로부터 만들어지며 천연 사향과 유사한 아주 강한 향기를 가진 황갈색이나 갈색의 페이스트(paste) 상태 또는 오일 상태의 수지성 물질이다.

사향(musk) : 사슴 종류의 분비물로서 보통 그것이 형성되는 향낭(香囊)(한 면은 평평하고 털이 없으며 다른 한 면은 볼록하며 미백색의 털로 덮여 있다)에 싸여 있다. 이 분비물은 암갈색이며 강한 냄새가 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사향은 **제29류**에 포함되는 인조사향(musk xylene · musk ambrette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캔대리디즈(cantharides) : 딱정벌레(beetle)의 일종으로서 주로 그들의 발포성(發泡性)이나 반대자극성을 이용한다. 그들은 보통 건조된 상태나 가루로 제시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동물의 선(腺)(animal gland)과 그 밖의 동물장기(animal organ)**로서 장기요법용 제품의 조제에 사용하며 본래의 상태나 처리방법에 의하여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췌장 · 고환 · 난소 · 담낭 · 갑상선 · 뇌하수체 등)으로서 신선 · 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된 것(예: 크레졸 · 아세톤이나 알코올 등으로 저장한 것을 포함하며 건조된 것이나 이들의 추출물은 **제외한다**)(**제3001호**)(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참조)

(2) **쓸개즙(bile)**[건조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쓸개즙 추출물(extract)은 **제외한다**](**제3001호**)

이 호에는 건조한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된 뱀과 벌의 독액(venom)으로서 앰플(ampoule)에 밀봉된 것은 **제외한다**(**제3001호**).

05.11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 - 소의 정액

- 기타

0511.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0511.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동물의 정액(animal semen)

(2) 수정란(animal embryo) : 이것은 그것을 받을 모체에 이식할 목적으로 냉동하여 운송한다.

(3) 동물의 피(animal blood)(액체 상태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식용 가능한지에 상관없다)

치료·예방이나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2호)**.

(4) **코치닐(cochineal)과 이와 유사한 곤충**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코치닐은 특정 종류의 선인장을 먹고 사는 곤충으로서 시장에는 흑색, 회색이나 은색, 적색의 3종이 있다. 코치닐은 카민 레이크(carmin lake)(**제3205호**)의 조제(調製)에 사용하는 적색염료(코치닐 추출물)(**제3203호**)를 공급한다.

코치닐과 유사한 곤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참나무(dwarf oak tree)류를 먹고사는 동물성 커미즈(kermes)이다. 커미즈는 **제3203호**에 분류하는 색이 선명하고 변하지 않는 적색 염료의 조제(調製)에 사용한다.

동물성 커미즈는 “광물성 커미즈(kermes mineral)”(**제3824호**)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코치닐과 커미즈(kermes)는 건조된 상태로 제시하며 원형이나 가루로 된 때도 있다.

(5)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란(魚卵 : fish egg, roe)과 어백(魚白)

(i) 부화용의 알 : 이는 배목(胚目 : embryonic eye)인 흑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별할 수 있다.

(ii) 낚시밥으로 사용하는 염장한 어란(魚卵 : fish egg, roe)으로서, 예를 들면, 대구나 고등어의 것 등이다. 이들은 대단히 불쾌한 냄새가 나며 보통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캐비어 대용물(**제1604호**)과 구별한다.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어란(roe)과 어백(魚白)은 **제외한다(제3류)**.

(6)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웨이스트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화이트 베이트(white bait)나 이와 유사한 어류의 비늘로서 신선하거나 보존처리된 것 (용액 속에 저장한 것은 제외한다) ; 이들은 모조진주의 도포(塗布)에 사용하는 펄 에센스(pearl essence)의 조제에 사용한다.

- (ii) 아이싱글라스(isinglass)와 어류 글루(fish glue) 제조에 사용하는 어류의 부레(maw, swim bladder)로서, 미가공(raw)의 것·건조한 것·염장한 것
- (iii) 글루 제조 등에 사용하는 어류의 장(魚腸)과 어류의 껍질(魚皮)의 웨이스트(waste)
- (iv) 어류 웨이스트(waste)

또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간·지느러미·꼬리·부레·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제3류)
 - (b) 제0508호에 해당되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극피동물의 껍데기
 - (c) 의약품 제조용의 식용에 부적합한 어류의 간(제0510호)
- (7) **잠종(蠶種)** : 이들은 담황색으로부터 점차로 회색이나 황토색으로 변하는 작은 열매의 모양을 지니며 보통 상자[또는 셀룰러 코움(cellular comb)]나 직물제 작은 자루에 포장하여 제시한다.
- (8) **개미알**
- (9) **동물의 힘줄[sinew(근(筋))·tendon(건(腱))]** : 아래(10)과 (11)에 열거한 설(屑)과 같이 주로 글루 제조용의 원료로서 사용한다.
- (10) **원피(原皮)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 (11) **생모피의 웨이스트(waste)** : 명확하게 모피가공업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 (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 : 층상으로 정리한 것인지,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마속(馬屬) 동물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미가공의 말의 털뿐만 아니라 세척·세정·표백·염색이나 동그랗게 말았거나(curled) 그 밖의 방법으로 정돈된 말의 털 또한 분류한다. 이 물품들의 벌크(bulk) 모양이나 묶음이나 타래 등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종이 등의 지지물(支持物) 위에 층상(層狀)으로 말의 털을 깔아 놓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종이 등의 시트 사이에 말의 털을 넣고 고정시켰거나 단순히 봉합한 것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방직공정을 거친 말의 털과 끝을 연결하여 기다랗게 한 말의 털은 **제외한다(제51류)**.

- (14) **동물성 해면** : 이 호에는 가공한 해면(海綿)[예: 석회질을 제거하거나 표백(漂白)한 것]과 미가공의 해면(海綿)(단지 세척한 것을 포함한다)이 모두 분류하며, 해면(海綿)의 웨이스트도 분류한다.

식물성 해면(海線)으로 알려진 수세미는 **제14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셸락(shellac)·시드락(seed lac)·스틱락(stick lac)과 그 밖의 락(제1301호)
- (b) 제15류의 동물성 지방
- (c) 동물학상 수집품과 표본[박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된 동물·나비와 그 밖의 곤충·알(egg) 등으로 구성된 것](제9705호)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주:

1. 이 류에서는 제0601호의 후단 외에는 통상 육묘·육종 업자나 판매업자가 재배용이나 장식용으로 공급하는 살아 있는 수목이나 상품(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7류의 감자·양파·샬롯(shallot)·마늘이나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0603호나 제0604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나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은 제외한다.

총설

이 류에는 육묘·육종업자(원예가를 포함한다)나 판매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조림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상태의 모든 종류의 살아 있는 식물(植物)이 포함되며, 또한 육묘·육종업자(원예가를 포함한다)나 판매업자가 일반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 식물은 수목(tree)이나 관목(shrub·bush)으로부터 특히 약용식물을 포함하는 실생식물(seeding vegetable)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 이 류에는 식용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를 구별할 수 없는 종자와 열매나 지하경(地下莖)과 구근(감자·양파·샬롯·마늘)은 제외한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절화(切花)·꽃봉오리·잎·가지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으로서 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시킨 것이나 장식용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것.
- (2) 꽃다발·화환·꽃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화훼 제품

06.01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 치커리 뿌리 (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0601.20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 치커리 뿌리

이 호에는 특히 다음 종류의 식물류의 인경(bulb) 등을 포함하며, 화분이나 상자 등에 넣은 상태로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선화 · 아네모네(구근류) · 비고니어 · 칸나 · 치오노도크사 · 컨벌레리어(lily of the valley) · 크로우커스 · 시클라멘 · 다리아 · 이리뮤러스 · 프리지어 · 프리털라리아 · 갠턴터스 · 글라디올러스 · 글록시니아 · 히아신스 · 아이리스 · 백합 · 먼브리셔 · 나시서스 · 오니도겔름 · 고양이밥 · 폴리안디스 · 러난쿨러스 · 리쳐디아 · 타이그리디아와 작은 튜립

이 호에는 또한 장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식물의 구근 등[예: 대황의 근경(根莖)]과 아스파라거스(asparagus)의 인경(鱗莖)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제7류** 특정의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구근 · 구경(球莖) · 근경(根莖)과 생강(**제0910호**)은 **제외한다**[예: 양파 · 샬롯(shallot) · 마늘 · 감자 · 돼지감자].

치커리 식물체와 치커리 뿌리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볏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 뿌리는 **제외한다(제1212호)**.

06.02 -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 껌꽃이용 가지 ·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 뿌리가 없는 껌꽃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0602.2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602.3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602.4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602.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접목용의 줄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수목(tree)과 관목(shrub · bush)(영림용 · 과수용 · 장식용 등)
- (2) 모든 종류의 재배용 식물과 종묘(種苗)(제0601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 (3) 살아 있는 식물의 뿌리
- (4) 뿌리가 없는 껌꽃이용 가지 ; 접붙임용 가지(접목이나 접순용) ; 덩굴과 순(筍)
- (5) 버섯식물드레드(mushroom plant thread)[균사(菌絲)]로 구성되어 있는 버섯종균(種菌)(토양이나 식물성 물질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류에 분류하는 수목 · 관목류와 그 밖의 식물은 뿌리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하였거나 등그렇게 싸거나 화분 · 통 · 상자나 이와 유사한 용기에 심은 상태로 제시한다.

이 호에서는 괴근(塊根)(예: 제0601호의 달리아)과 제0601호나 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를 제외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0602.20호

소호 제0602.20호에서 “수목과 관목(tree, shrub and bush)”에는 줄기와 덩굴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줄기(예: 포도나무 · 보이젠베리 · 듀베리 · 키위프루트)와 그들의 절단된 뿌리를 포함한다.

이 소호는 들장미(소호 제0602.40호)를 제외한다.

소호 제0602.20호 · 제0602.30호 · 제0602.40호와 제0602.90호

살아있는 뿌리는 그 식물이 해당하는 소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

06.03 -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

0603.11 -- 장미

0603.12 -- 카네이션

0603.13 -- 난

0603.14 -- 국화

0603.15 -- 백합[릴리움(*Lilium*)속]

0603.19 -- 기타

0603.90 - 기타

이 호에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뿐만 아니라 꽃이나 꽃봉오리로 만든 꽃다발·화환·꽃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꽃다발류나 단추구멍에 꽂는 꽃)도 포함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리본·종이 트리밍 등)을 함유하였더라도 화훼제품으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수목과 관목의 자른 가지로서 꽃이나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것(예: 목련과 특정형의 장미)은 이 호에 해당되는 절화(切花)로 간주한다.

이 호에는 제시하는 상태가 꽃다발이나 장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꽃이나 꽃잎과 꽃봉오리는 **제외한다(제1211호)**. 또한 이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collage)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식판도 **제외한다**.

06.04 -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 신선한 것

0604.90 - 기타

이 호에는 식물의 잎·가지 등뿐만 아니라 식물의 잎·수목·관목과 그 밖의 식물의 부분으로 결합되거나 풀·이끼와 지의(地衣)를 결합하여 만든 꽃다발·화환·꽃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주로 화훼(花卉)제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재료(리본·철사테 등)로 된 부속품을 사용하였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장식용으로 열매가 달려 있더라도 좋으나 꽃이나 꽃봉오리와 결합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0603호)**.

이 호에는 명확하게 이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천연의 크리스마스트리를 포함한다(예: 뿌리를 자르거나 끓는 물에 담가서 죽은 것).

이 호에는 제시하는 상태가 꽃다발이나 장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제1211호**)나 편조물(編粗物)에 사용하는 종류(**제1401호**)의 식물과 식물의 부분[풀·이끼와 지의(地衣)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collage)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식판도 **제외한다**.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주:

- 이 류에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눔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제0713호)
 -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
 -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제1105호)
 -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1106호)
-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 제0711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물품(예: 감자)은 그 온도가 10℃ 정도로 강하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frozen)”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도 포함되는데, 얇게 썬 것이거나 펠릿(pellet) 모양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제시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제4부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와 펠릿(pellet)은 제11류에 분류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

제2부
제7류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에 포장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물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채소는 식용·과중용·생식용인지에 상관없다[예: 감자·양파·샬롯·마늘·채두류(菜豆類)]. 단, 이식에 적합한 상태의 묘목(**제0602호**)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이 류의 주와 위의 제외규정에 추가해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치커리(chicory)와 치커리 뿌리(**제0601호**나 **제1212호**)
- (b) 식품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식물[예: 곡물(**제10류**)·사탕무와 사탕수수(**제1212호**)]
- (c) 제0714호의 뿌리나 괴경(塊莖)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 (d)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예: 바질(basil)·보리지(borage)·히속(hyssop)·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sage)와 우영(*Arctium lappa*)의 건조한 뿌리](**제1211호**)
- (e) 식용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제1212호**)
- (f) 스워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제1214호**)
- (g) 사탕무나 당근의 꼭지(**제2308호**)

07.01 -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 - 종자용

0701.90 - 기타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감자를 분류한다(단, 제0714호의 고구마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종자용 감자와 햇감자도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0701.10호

소호 제0701.10호에서 “종자용(seed)”이라는 표현은 소관 국가기관에서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감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07.02 -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토마토를 분류한다.

**07.03 -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 양파와 샬롯(shallot)

0703.20 - 마늘

0703.9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파속의 채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분류한다.

- (1) 양파(onion set와 spring onion 포함)와 샬롯
- (2) 마늘
- (3) 리크(leek)·차이브(chive)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07.04 - 양배추 · 꽃양배추 · 콜라비(kohlrabi)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0704.20 - 방울다다기 양배추

0704.90 - 기타

이 호에 해당되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꽃양배추와 브로콜리(예: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와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 (2) 방울다다기 양배추
- (3) 그 밖의 결구 배추속[예: 흰배추(white cabbage) · 사보이배추(Savoy cabbage) · 붉은 배추(red cabbage) · 배추(Chinese cabbage)] · 콜라드(collard) · 케일(kale)과 그 밖의 잎이 많은 배추속 · 스프라우팅 배추속 · 콜라비

단, 뿌리형태의 그 밖의 배추속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제0706호의 순무 · 제1214호의 스위드(rutabaga)].

**07.05 -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코리엄(*Cichorium*)속]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상추

0705.11 -- 결구(結球) 상추

0705.19 -- 기타

- 치커리(chicory)

0705.21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705.29 -- 기타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상추(*Lactuca sativa*)를 분류하는데, 그것의 주요한 형태는 결구(結球) 상추(cabbage or head lettuce)이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치커리[시코리엄 속(*Cichorium spp.*)]를 분류하며, 주요한 종류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위트루프(표백한 것)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 (2) 에스커로울 치커리(*Cichorium endivia* var. *latifolia*)
- (3) 곱슬머리 모양 치커리(*Cichorium endivia* var. *crispa*)(엔디브라고도 한다)

이 호에서는 치커리(chicory plant)와 치커리 뿌리는 **제외한다(제0601호나 제1212호)**.

**07.06 -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root)·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 당근과 순무

0706.90 - 기타

이 호에 분류하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뿌리류에는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root)(salad beet)·선모·셀러리액(turnip-rooted나 German celery)·무·스쿠조니라·겨자무·두루미냉이(Chinese artichoke)(*Stachys affinis*)·우엉(*Arctium lappa*)과 양방풀나물(*Pastinaca sativa*)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그들의 꼭지가 제거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0709호**의 셀러리
- (b)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우엉의 뿌리(**제0711호**)
- (c) **제1214호**의 사료용 물품

07.07 -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오이류만을 분류한다.

07.08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708.20 - 콩[비그나(*Vigna*)속 · 파세러스(*Phaseolus*)속]

0708.90 -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이 호에 분류하는 채두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청완두(green pea)와 사료용 완두를 포함한다.
- (2) 콩[파세러스(*Phaseolus*)속 · 비그나(*Vigna*)속] : 이것들에는 리마(Lima)콩이나 버터콩(butter bean), 녹두, 꼬투리를 식용에 쓸 수 있는 콩(예: 강남콩 · French콩 · runner콩 · string콩 · wax콩이나 snap콩)과 동부콩(black eye를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 (3)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나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와 편두(扁豆)(*Dolichos lablab L.*)
- (4) 이집트콩(가반조스)
- (5) 렌즈콩(lentil)
- (6) 구아(guar)의 씨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대두(제 1201호)

(b) 로커스트콩(locust bean)(제 1212호)

07.09 -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0709.2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 0709.30 - 가지(에그플랜트)
- 0709.4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 버섯과 송로(松露)
-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 0709.52 --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 0709.53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 0709.5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 0709.55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 0709.56 -- 송로버섯[튜버(*Tuber*) 속]
- 0709.59 -- 기타
- 0709.60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0709.70 - 시금치류
 - 기타
- 0709.91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 0709.92 -- 올리브
- 0709.93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 0709.99 -- 기타

이 호의 채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아스파라거스(asparagus)
- (2) 가지(에그플랜트)
- (3) 셀러리(celery)[**제0706호**의 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 (4) 버섯[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예: 보통의 양송이 버섯(*A. bisporus*)),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표고버섯(*Lentinus edodes*)과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을 포함한다]과 송로(松露)버섯[튜버(*Tuber*)속]
- (5)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이들 과실은 보통 “고추”라고 한다.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의 범위는 단고추나 종 모양 고추(*Capsicum annuum* var. *annuum*)[이것들은 캡시컴(*Capsicum*)속의 것 중에서 가장 순하고 가장 다수인 것이며, 풋고추나 익은 고추상태에서 대부분 샐러드용 채소로 흔히 사용한다]부터 보다 매운 변종인 캡시컴 푸르츠센스(*Capsicum frutescens*)와 캡시컴 앤넘(*Capsicum annuum*)[이것들에는 칠리·케이에네(Cayenne)고추·파프리카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향미료로 흔히 사용한다]까지이다. 피멘타(*Pimenta*)속의 과실은 자마이카 고추[이는 클로브(clove) 고추·영국(English) 고추와 allspice로도 알려져 있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건조·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제외한다(제0904호)**.
- (6) 시금치(뉴질랜드시금치와 들시금치 포함)
- (7)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s)

- (8)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옥수수의 속대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9)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 (10) 올리브
- (11) 장군풀 · 식용 엉겅퀴 · 회향 · 케이퍼(*caper*)와 팽이밥
- (12) 근대(*chard* : *white beet*)와 오크라(*okra* : *gumbo*)
- (13) 파슬리(*parsley*) · 취어빌(*chervil*) · 타라곤(*tarragon*) · 크레스(*cress*)(예: *watercress*) · 세이보리(*Satureia hortensis*) · 코리앤더 · 딜 · 스위트 마조람[마요라나 호르텐시스(*Majorana hortensis*) · 오리가눔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 야생 마조람(*Origanum vulgare*)은 **제외한다(제1211호)**.
- (14) 죽순과 콩나물

이 호에는 보통 중국의 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엘레오차리스 덜시스(*Eleocharis dulcis*)나 이레오차리스 튜베로사(*Eleocharis tuberosa*)종의 식용 피경을 **제외한다(제0714호)**.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0710.10 - 감자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0710.21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0710.22 -- 콩[비그나(*Vigna*)속 · 파세러스(*Phaseolus*)속]
- 0710.29 -- 기타
- 0710.30 - 시금치류
- 0710.40 - 스위트콘
- 0710.80 - 그 밖의 채소
- 0710.90 - 채소류의 혼합물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lisation)를 급속히 통과 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괴를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에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그 밖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나 그 밖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은 **제외한다(제4부)**.

냉동법으로 보존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냉동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 올리브

0711.40 - 오이류

-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11.59 -- 기타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이 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를 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에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 이들의 주요한 종류는 양파·올리브·케이퍼·오이류·버섯·송로(松露)와 토마토이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된 것에 추가해서 특수처리(예: 소다수나 락트산 발효에 의한 처리)된 물품은 **제외하며** ; 이들은 **제20류**에 해당한다(예: 올리브·사우어크라우트·오이와 녹두).

07.12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 - 양파

-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송로(松露)

0712.3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12.32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0712.33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0712.3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0712.39 -- 기타

0712.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송로·당근·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이나 얇게 썬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julienne).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꽃 양배추·파슬리(parsley)·취어빌(chervil)·양파·마늘·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건조한 채두류로서 꼬투리를 벗긴 것(**제0713호**)

(b) 건조·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제0904호**),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와 펠릿(pellet)(**제1105호**),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제1106호**)

(c) 혼합 조미료(**제2103호**)

(d) 건조 채소로 만든 수프 조제품(**제2104호**)

07.13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 0713.1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0713.20 -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 콩[비그나(*Vigna*)속 · 파세러스(*Phaseolus*)속]
- 0713.31 -- 녹두[비그나 멩고(엘) 헤퍼(*Vigna mungo (L) Hepper*)종 ·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 0713.32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 0713.33 --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 0713.34 --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 0713.35 --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 0713.39 -- 기타
- 0713.40 - 렌즈콩
- 0713.50 -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 0713.60 -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 0713.90 - 기타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 · 이집트콩 · 팥(아주기)와 그 밖의 콩 · 렌즈콩 · 누에콩 · 말먹이용 누에콩 · 구아]를 분류하며, 과중용(화학적 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될 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효소(특히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하고 수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나, 이러한 열처리는 자엽(子葉 : cotyledon)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는 껍질을 제거한 것이나 쪄낸 것일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건조탈각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 (b) 대두(**제1201호**)
- (c) 베허(vetch)의 종자(누에콩과 말먹이용 누에콩은 제외한다) · 들완두(tare)와 루핀(lupine)(**제1209호**)
- (d) 로커스트콩(**제1212호**)



[소호해설]

소호 제0713.31호

이 호에는 비그나 멩고 (L.) 헤퍼(*Vigna mungo (L.) Hepper*)종(urd나 black gram이라고도 한다)과 비그나 라디아타 (L.)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의 녹두(mung이나 녹색 gram이라고도 한다)만을 분류한다. 이들 종류는 숙주나물(bean sprout)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07.14 -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샬렙(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塊莖) [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0714.1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 0714.20 - 고구마
- 0714.30 - 얄[디오스코레아(*Dioscorea*)속]
- 0714.4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속]
- 0714.50 -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속]
- 0714.90 - 기타

이 호에는 식품 제조용이나 공업용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많이 함유하는 괴경(塊莖 : tuber)과 뿌리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사고야자(sago)의 심(pith)도 포함하며 ; 때로는 괴경(塊莖)과 뿌리는 식용이나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속하는 뿌리나 괴경(塊莖)의 조각(예: 칩)이나 제1106호에 속하는 그들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가루로부터 만든 물품(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얇게 썬 것이거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이 펠릿(pellet)은 압축하거나 결합제[당밀 · 아황산펄프의 폐액(lye)의 농축물 등]를 첨가하여 펠릿(pellet)으로 한 것도 있으며 첨가한 결합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3% 이하이다. 매니옥(manioc) 펠릿(pellet)은 부서진 것일 수 있는데, 이들은 펠릿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부서진 매니옥 펠릿은 그들의 외관상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구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매니옥 펠릿의 부서진 조각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유질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물어 있는 소량의 모래나 규사를 가지고 있는 균질화하지 않은 작은 조각(검은 반점을 가진 갈색)같은 것이 있다.

이 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뿌리와 괴경(塊莖)[매니옥(매니훗 에스쿨렌타 : *Manihot esculenta*) · 고구마(이포모에아 바타타스 : *Ipomoea batatas*)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보통 중국의 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엘레오차리스 덜시스(*Eleocharis dulcis*)나 엘레오차리스 튜베로사(*Eleocharis tuberosa*)종의 식용 괴경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그 밖의 류에 해당한다[예: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 전분(제1108호)과 타피오카(제1903호)].

또한 이 호에는 살아있는 달리아(dahlia)의 괴경(塊莖)(제0601호)과 신선하거나 건조한 감자(제0701호나 제0712호에 각각 분류)를 제외한다.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4. 제0812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해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찌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은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멜론이나 특정 감귤류와 같은 일부 물품은 그들의 온도가 섭씨 10도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된 경우에도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frozen)”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 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이 삼출(滲出) 건조되어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분류하지 않는다**. “삼투 탈수(osmotic dehydration)”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실은 **제20류**에 분류한다(제2008호).

제2부
제8류

또한 다른 류에 열거된 몇몇 식물성 물품은 식물학 상으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 예:

- (a) 올리브·토마토·오이류·호박류·가지(일명 에그-플랜트)·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제7류)
- (b) 제9류에 분류하는 커피·바닐라·주니퍼의 열매와 그 밖의 물품
- (c) 땅콩과 그 밖의 채유용 열매·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열매·로커스트콩·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
(제12류)
- (d) 코코아두(제1801호)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i)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제1106호)
- (ii)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류)
- (iii)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밤·아몬드와 무화과)(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건조 프룬·건조 견과류)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은 이 류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는 **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한 딸기)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08.01 -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코코넛

0801.11 -- 말린 것

0801.12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0801.19 -- 기타

- 브라질너트

0801.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1.22 -- 껍데기를 벗긴 것

-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1.32 -- 껍데기를 벗긴 것

이 호에는 말린 코코넛(desiccated coconut), 즉,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을 포함한다. 그러나 코코넛 착유(搾油)에 사용하며 식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코코넛의 건조과육 즉, 코프라(copra)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203호)**.



[소호해설]

소호 제0801.12호

이 소호에는 바깥쪽의 섬유질의 껍질(中果皮 : mesocarp)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을 포함한다.

08.02 -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아몬드

0802.1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12 -- 껍데기를 벗긴 것

-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속]

0802.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22 -- 껍데기를 벗긴 것

- 호두

0802.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32 -- 껍데기를 벗긴 것

- 밤[카스타네아(*Castanea*)속]

0802.4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42 -- 껍데기를 벗긴 것

-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5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52 -- 껍데기를 벗긴 것

-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802.6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62 -- 껍데기를 벗긴 것

0802.70 -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속]

0802.80 - 빈랑자(areca nut)

- 기타

0802.91 --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92 -- 잣(껍데기를 벗긴 것)

0802.99 -- 기타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견과류로는 아몬드(단 것이나 쓴 것)·헤즐너트(hazelnut)·필버트(filbert)·호두·밤[카스타네아(*Castanea*)속]·피스타치오(pistachio)·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피칸(pecan)과 잣(pine nut)이 있다.

이 호에는 주로 씹는 것(masticatory)으로 사용하는 빈랑나무 열매와 씹는 것으로 사용하며 또한 음료제조용의 베이스(base)로서도 사용하는 콜라나무열매, 때로는 마름이라고 불리는 트라파나탄스(*Trapa natans*)종의 너트류의 향미를 가진 가시가 많은 식용 과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보통 중국의 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엘레오차리스 덜시스(*Eleocharis dulcis*)나 엘레오차리스 투베로사(*Eleocharis tuberosa*)종의 식용 괴경(塊莖)(**제0714호**)
- (b) 호두 껍질이나 아몬드외 외과피(**제1404호**)
- (c) 땅콩(**제1202호**)· 볶은 땅콩이나 피넛 버터(**제2008호**)
- (d) 칠엽수(七葉樹)의 열매(Horse chestnut : *Aesculus hippocastanum*)(**제2308호**)

08.03 -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 플랜틴(plantain)

0803.90 - 기타

이 호에는 무사(*Musa*)속의 식용에 적합한 모든 과실을 포함한다.

플랜틴(plantain)은 다른 바나나보다 달지 않은 전분질의 바나나이다. 플랜틴에 포함되어 있는 전분은 과실이 여무는 과정에서 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 플랜틴은 주로 튀기거나, 볶거나, 찌거나, 삶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리한 이후에 소비한다.

08.04 -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 - 대추야자

0804.20 - 무화과

0804.30 - 파인애플

0804.40 - 아보카도(avocado)

0804.50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

이 호에서 “무화과(fig)”란 용어는 피커스 캐리카(*Ficus carica*)종의 과실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증류용의 무화과인지에 상관없고 ; 그러므로 **제0810호**에 해당되는 선인장 무화과(cactus fig : pickly pear)는 **제외한다**.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 오렌지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 · 세트수머(satsuma)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21 -- 만다린(mandarin)[탄제린(tangerine) · 세트수머(satsuma)를 포함한다]

0805.22 -- 클레멘타인(clementine)

0805.29 -- 기타

0805.4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0805.50 -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 · 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0805.90 - 기타

“감귤류의 과실”이라는 표현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오렌지[단 맛이나 쓴 맛(세빌 오렌지)]

(2) 만다린(mandarin)[탄제린(tangerine)과 세트수머(satsuma) 포함]

만다린(mandarin)은 다음과 같은 주요 종류나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

- 세트수머[시트러스 언쉬우 마르코비치(*Citrus unshiu* Marcovitch)] : 수많은 변종이 있다.
- 킹(king)[시트러스 노빌리스 로우레이로(*Cirtus nobilis* Loureiro)] : 여러 변종이 있다.
- “메디테라네이언(Mediterranean)”[시트러스 델리시오사 테노레(*Citrus deliciosa* Tenore)] : 또한 윌로우 리프(Willowleaf) 만다린으로도 알려져 있다.
- “보통계(Common)”[시트러스 레티쿨라타 블랑코(*Citrus reticulata* Blanco)] : 수많은 변종이 있다.
- 작은 열매 만다린 : 여러 종이 있다.

(3) 클레멘타인(clementine) · 윌킹(wilking)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4)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5)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 · 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과 라임[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6) 시트론(citron) · 감귤(kumquat)과 베르가못(bergamot) 등

이 호에는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작고 설익은 형태의 오렌지와 레몬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감귤류 과실의 껍질(제0814호)

(b) 특히 감귤류 과실로부터 정유(精油)(petit-grain)를 추출(抽出)할 목적으로 꽃이 핀 직후에 떨어져서 건조한 상태로 수집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익지 않은 오렌지 즉, “오렌지 피(orange pea)”나 “오랑제트(orangette)”(제1211호)



[소호해설]

소호 제0805.21호

이 소호는 만다린(mandarin)[탄저린(tangerine)과 세트수머(satsuma)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보통계(Common)” 오렌지류 그룹의 만다린[시트러스 레티쿨라타 블랑코(*Citrus reticulata* Blanco)]은 보통 오렌지들에 비해 작고, 납작한 모양과 쉽게 껍질이 벗겨지며 조각이 더 잘 쪼개지고, 그리고 더 달콤하고 향이 짙은 맛에 의해 구별할 수 있다. 만다린의 속은 벌어져 있고(다른 오렌지보다 훨씬 더 벌어져 있다), 녹색 떡잎을 가진 씨를 가지고 있다(소수의 예외가 있다).

탄저린은 모양이 둥글고 오렌지보다 약간 작다. 껍질은 색깔이 밝은 오렌지색이거나 붉은 색이다. 탄저린은 껍질이 쉽게 벗겨지며 그 맛은 다른 감귤류 과일보다 신맛이 덜하다.

세트수머[시트러스 언쉬우 마르코비치(*Citrus unshiu* Marcovitch)]는 만다린의 조생종이다. 열매는 크고 노란 오렌지색에 과즙이 많고, 신맛이 없으며 씨가 없다.

만다린 잡종(탄저린과 세트수머잡종을 포함한다)은 소호 제0805.29호에 분류한다.

소호 제0805.22호

이 소호는 클레멘타인(clementine)을 분류한다.

클레멘타인[시트러스 레티쿨라타 ‘클레멘티나’(*Citrus reticulata* ‘Clementina’)]는 껍질의 색깔이 오렌지색에서 붉으스레한 오렌지색이라는 점에서 만다린(mandarin)과 구별한다. 그 껍질은 부드럽고 윤이 나지만 껍이 약간 도톰도톰하다. 또한, 모양이 만다린처럼 납작하지 않고 오히려 둥그스름하며 크기는 더 작다. 클레멘타인은 만다린처럼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쪼개진다. 맛은 달콤하고 조금 신맛이 있으며 향기가 있고, 약간 오렌지와 더 비슷하다.

소호 제0805.29호

이 소호는 윌킹(wilking)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을 분류한다.

윌킹(wilking)은 두 가지의 다른 만다린 군(mandarin)[윌로우리프(Willowleaf)와 킹(King)]에 속하는 모체(母體) 교배종이다. 윌킹(wilking)은 작은 것부터 중간 크기로 약간 납작한 모양이다. 성숙기에 껍질은 오렌지색이며, 윤기가 나며, 번들번들하며 껍이 약간 도톰도톰하다. 껍질은 두께가 중간 정도나 얇은 편이며 약간 무른 편이고, 약간 응집력이 있으나 껍질은 쉽게 벗겨진다. 과육(果肉)은 짙은 오렌지색이며 씨가 많이 있다. 윌킹(wilking)은 매우 과즙이 많고, 향과 독특한 맛이 풍부하다.

그 밖의 주요 교배종에는 탄젤로스(tangelos)[만다린(mandarin)과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나 포멜로(pomelo)와의 교배종], 탄골(tangor)(탄저린(tangerine)과 오렌지와 교배종), 캘러먼딘(calamondin), 리오스(lyos)와 랑푸르(rangpur)가 있다.

08.06 -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 - 신선한 것

0806.20 - 건조한 것

이 호에는 온실이나 옥외에서 재배한 것으로서 디저트(dessert)용이나 양조용(통에 무질서하게 포장된 것을 포함한다)에 공하는 신선한 포도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건포도가 포함되며, 그 주요한 종류로는 “커런트(currant)” · “술타너(sultana)” · “이즈미르(Izmir)”와 “톰프슨(Thompson)”이나 소위 “씨없는(seedless)” 건포도(사실상 이상의 것 모두 씨가 없는 건포도이다)와 “머스카텔(Muscatel)” · “말래가(Malaga)” · “데니아(Denia)” · “다마스커스(Damascus)” · “렉시르(Lexir)”나 “고르도(Gordo)” 건포도와 같은 씨가 있는 큰 종류의 건포도 등이다.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 수박

0807.19 -- 기타

0807.2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이 호에는 시트룰러스 벌가리스(*Citrullus vulgaris*)종이나 쿠쿠미스 멜로(*Cucumis melo*)종의 신선한 멜론[특히 수박·시트론 멜론(preserving melon)·사향참외·캔털루프·카사바와 허니듀 멜론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포포(papaw)나 파파야(papaya)로 알려진 캐리카 파파야(*Carica papaya*)종의 멜론과 유사한 과실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영어로 포포우(pawpaw)로 알려진 아시미나 트릴로바(*Asimina triloba*)종의 과실은 **제외한다(제0810호)**.

08.08 -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 - 사과

0808.30 - 배

0808.40 - 마르멜로(quince)

사과와 배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디저트용·음료 제조용(예: 사과술이나 배술)이나 공업용(예: 사과 페이스트·잼이나 젤리의 조제와 펙틴의 추출)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르멜로(quince)는 주로 잼이나 젤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08.09 - 살구 · 체리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자두 · 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 - 살구

- 체리

0809.21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0809.29 -- 기타

0809.3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0809.40 - 자두와 슬로(sloe)

이 호에는 살구 · 모든 종류의 체리[화이트허트(whiteheart) 체리 · 모렐로(morello) 체리 등]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모든 종류의 자두[그린게이지(greengage) · 미라벨(mirabelle) · 담손(damson) 등]와 슬로(sloe)를 분류한다.

08.10 -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0810.10 - 초본류 딸기
- 0810.2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 0810.30 -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 0810.40 - 크랜베리(cranberry) · 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 0810.50 - 키위프루트(kiwifruit)
- 0810.60 - 두리안(durian)
- 0810.70 - 감
- 0810.90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표의 그 밖의 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식용과실이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에 있는 제외규정 참조).

그러므로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초본류 딸기
- (2)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mulberry) · 로간베리(loganberry)
- (3)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 (4) 크랜베리(cranberry) · 빌베리(bilberry) · 블루베리(blueberry) · 머틀베리(myrtle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 (5) 키위프루트(kiwifruit)(*Actinidia chinensis Planch*나 *Actinidia deliciosa*)
- (6) 두리안(durian)(*Durio zibethinus*)
- (7) 감(kaki)
- (8) 보이센베리 · 로완베리 · 엘더베리 · 사포딜라(나세베리) · 석류 · 선인장무화과(prickly pear) · 장미의 열매 · 대추 · 서양모과 · 룡간 · 리치 · 사우어슈 · 스위트슈과 아시미나 트릴로바(*Asimina triloba*)종의 과실[포포우(pawpaw)라고도 한다].

이 호에서는 주니퍼베리(juniper berry)를 **제외한다(제0909호)**.

08.11 -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 초본류 딸기

0811.2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 (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0811.90 - 기타

이 호에는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이나 견과류를 분류한다. “냉장(chilled)”과 “냉동(frozen)”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냉동하기 전에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과실과 견과류도 이 호에 분류한다. 냉동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조리한 과실과 견과류는 **제외한다(제20류)**.

또한 이 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냉동 과실과 견과류도 분류한다. 설탕은 산화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얼었던 것이 녹을 때 발생하기 쉬운 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또한, 이 호에는 소금을 첨가한 것도 분류한다.

08.12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 - 체리

0812.90 - 기타

이 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해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데친 것(blanched or scalded)인지에 상관없다]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물품은 주로 식품공업(잼의 제조나 설탕절임 과실의 조제 등)에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물품으로는 체리·초본류 딸기·오렌지·시트론·살구와 그린케이즈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통·트레이나 오픈라스(open-lath)형의 용기에 포장한다.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0813.10 - 살구
- 0813.20 - 프룬(prune)
- 0813.30 - 사과
- 0813.40 - 그 밖의 과실
- 0813.5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A) 건조한 과실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프룬(prune)·사과·복숭아와 배가 있다. 건조 사과와 배는 조리용은 물론 사과술이나 배술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속이나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하거나 증발건조하여 얇게 썬 모양이나 블럭 모양의 과육으로 제시한다[특히 살구나 프룬(prune)의 경우].

이 호에는 타마린드 껍지(tamarind pod)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당분이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타마린드 펄프를 포함하며, 씨·줄기·내과피의 조각들을 포함하였는지에 상관없다.

(B)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또한 이 호에는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모든 혼합물을 분류한다(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의 혼합물·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와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흔히 이러한 혼합물은 박스·셀룰로오스 다발 등으로 제시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특정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 제조용으로 조합된(예: 작은 주머니에 담는다던가)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과실 한 가지 종류 이상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2106호**).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감귤류 과실의 껍질로는 오렌지[비터 오렌지(bitter orange)나 세빌 오렌지(Seville orange)를 포함한다]·레몬과 시트론(citron)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사탕절임 과피의 제조나 정유의 추출용(抽出用)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과피의 가루(제 1106호)와 사탕절임 과피(제 2006호)는 제외한다.

제 9 류

커피 · 차 · 마테(maté) · 향신료

주:

1.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의 혼합물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한다.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서 제1211호의 쿠베브 페퍼(Cubeb pepper)[파이퍼 쿠베바(*Piper cubeba*)]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다.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 · 차(tea) · 마테(maté).

(2)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하는 식물성 생산품(종자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원래 모양, 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의 형태일 수도 있다.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에 관하여는 이 류의 주 제1호를 참조할 것.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이나 나목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한다.

(a) **회석제**(분산 기제) : 이는 식품 조제에 있어서 향신료의 측정과 분산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곡물 가루 · 분쇄 러스크(ground rusk) · 포도당 등].

(b) 식용 **색소**(예: 크산토피)

(c) 글루탐산나트륨과 같이 향신료의 향을 강하게 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물품 (**synergetics**)

(d) **소금**이나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 : 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향신료의 보존과 향기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량 첨가한다.

제2부
제9류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양(量)이 첨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는 다음 (i), (ii)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기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의 식물, 식물의 부분, 종자와 과실[원래 모양(原狀)의 것·절단한 것·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로 구성된 혼합물도 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직접 음료용 향신료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extract)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 (i) 본질적인 특성이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중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종이나 그 이상의 종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 ;
- (ii) 본질적인 특성이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 중 둘이나 그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의 혼합물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

그러나 이 류에서는 (i)에서 규정한 종이나 (ii)에 규정한 혼합물에 의해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주어지지 않는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7류**의 채소[예: 파슬리·취어빌·타라곤(tarragon)·크레스(cress)·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코리앤더와 딜]
- (b) 겨자종자(**제1207호**) ; 겨자가루(조제했는지에 상관없다)(**제2103호**)
- (c) 홉(hop)(**제1210호**)
- (d) 향신료로도 사용하지만 주로 향료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과실·씨나 식물의 부분[예: 카시아 꼬투리(cassia pod)·로즈메리·야생 마조람·바질·보리지·히습·민트류·루우와 세이지](**제1211호**)
- (e) 혼합 조미료(**제2103호**)

09.01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즉 관목으로부터 채취한 열매 ; 황색 껍질이 있는 커피나 ; 종자·껍질을 벗긴 커피나 종자
- (2) 여러 가지의 용제에 커피 원두를 담가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 (3) 볶은 커피(카페인 함유량과 잘게 부숴는지에 상관없다)
- (4)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 (5)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한 커피 대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왁스(**제1521호**)

(b)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때로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것)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커피를 함유하지 않는 볶은 커피 대용물(**제2101호**)

(c) 카페인(커피 중의 알칼로이드)(**제2939호**)

09.02 -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0902.1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0902.2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0902.3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0902.4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쪄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진다.

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 오롱차(Oolong tea)]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봉오리와 잔유물이 포함되며 분말차(잎·꽃·봉오리)를 공 모양이나 태블릿(tablet) 모양으로 응집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압축하여 제시하는 차류도 포함한다.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자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카페인을 제거한 차는 포함되지만, 카페인 그 자체는 **제외한다(제2939호)**.

더욱이, 이 호에서는 "차(tea)"로 종종 호칭되긴 하지만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에서 제조한 물품은 **제외한다**. 예:

- (a) 마테(maté)(파라과이 차)(**제0903호**)
- (b)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제조용 물품. 이들은 예를 들면, **제0813호·제0909호·제1211호나 제2106호**에 분류한다.
- (c) 인삼"차"[인삼추출물(extract)에다 유당이나 포도당을 혼합한 것](**제2106호**)

09.03 - 마테(maté)

마테(maté)는 남미에서 재배되는 서양감탕나무과(holly family)에 속하는 어떤 관목의 잎을 말린 것으로서, 때로는 “파라과이차(Paraguay tea)”나 “제수이트 티(Jesuits' tea)”로 알려져 있다. 마테는 극소량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음료를 조제하는데 넣어서 사용한다.

09.04 -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후추

0904.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4.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 --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4.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 **후추(pepper)**[파이퍼(*piper*) 속의 것]

후추에는, 쿠베브 페퍼(파이퍼 쿠베바 : *Piper cubeba*)(제1211호)를 제외하고 파이퍼(*Piper*)속의 모든 후추식물의 종자와 열매를 포함한다. 보통 중요한 종류로는 흑후추나 백후추의 형태를 갖고 있는 파이퍼 니그럼(*Piper nigrum*)종의 후추가 있다. 흑후추는 설익은 열매를 햇볕에 건조하거나 훈증하여 얻어지며, 때로는 끓는 물로 처리된 후에 건조나 훈증되는 수도 있다. 백후추는 과육과 종자의 외피를 근소한 발효나 마찰에 의하여 제거한 거의 성숙한 열매로 조제한 다. 또한 백후추는 가끔 흑후추의 외피부분을 제거하여 조제되며 황회색을 띠며 흑후추처럼 그렇게 맵지는 않다.

긴후추(*Piper longum*)는 또 다른 종류의 후추이다.

또한 이 호에는 후추의 더스트(dust)와 부스러기도 포함한다.

후추로 잘못 알려진 어떤 물품은 사실은 피멘토(pimento)로서 예를 들면, 인도·터키·스페인·카이엔(Cayenne)과 자마йка 산의 후추류이다.

(2)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의 건조한 것·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캡시컴(*Capsicum*)속의 것은 일반적으로 *Capsicum frutescens*나 *Capsium annuum*종에 속하며, 칠리(chilli)와 파프리카(paprika)의 두 개의 주요 그룹을 포함한다. 많은 변종(Cayenne pepper·Sierra Leone과 Zanzibar pepper·Spanish와 Hungarian paprika 등)이 있다.

피멘타(*Pimenta*)속의 과실은 자마йка 후추(clove pepper·English pepper와 allspice로 알려져 있다)를 포함한다.

이들 과실은 쓰고·냄새가 독하고·맵고·오래가는 맛을 지닌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운 맛을 갖지 않은 캡시컴속의 다른 변종도 있다(예: *Capsicum annuum* var. *grossum*).

이 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신선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709호).

09.05 - 바닐라

0905.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5.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이것은 난초(orchid)과에 속하는 담장이 식물의 열매(또는 콩)로서, 색깔은 검고 향(香)이 매우 진하다. 바닐라 콩은 길고 짧은 2종이 있으며 극히 저급품은 바닐론[바닐라 폼포나(*Vanilla pompona*)종에서 얻어진다]으로 알려져 있고, 부드럽고 거의 끈적끈적하며 항상 벌어져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바닐라 올레오레진[때로는 “바닐라 레지노이드(vanilla resinoid)”나 “바닐라 추출물(vanilla extract)”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한다](**제1302호**)
- (b) 바닐라당(**제1701호**나 **제1702호**)
- (c) 바닐린(바닐라의 향이 나는 주성분)(**제2912호**)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 --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0906.19 -- 기타

0906.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계피는 라우리스(*Laurus*)과에 속하는 특정 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이다. 또한 스리랑카(실론) 타입·세이셸 타입과 마다가스카르 타입의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는 고급 계피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연한 색깔을 가진 것으로서 나무 껍질의 조각을 여러 개 같이 말아서 다발로 제시한다. 중국타입[*Cinnamomum cassia*(Nees) ex Blume]·인도네시아타입[*Cinnamomum burmanii*(C. G. Nees)]과 베트남타입(*Cinnamomum loureirii* Nees)계피[카시아(cassia)나 보통 계피라고도 부른다]는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는 두꺼운 나무 껍질층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층씩 등글게 말은 형태로 제시한다. 계피의 다른 변종인 시나모뎀 오브투스폴리움(*Cinnamomum obtusifolium*)·시나모뎀 타말라(*Cinnamomum tamala*)와 시나모뎀 신타크(*Cinnamomum sintek*)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칩(chip)”으로 알려져 있는 계피 웨이스트(waste)도 분류하며 이들은 주로 계피 에센스(essence)의 조제에 사용한다.

계피나무 꽃은 계피나무의 꽃을 말려서 체로 친 것이다. 이들은 곤봉 모양이며 길이는 1cm를 넘지 아니하며 잘게 부순 후에 계피와 혼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계피나무 열매도 포함한다.

**[소호해설]****소호 제0906.11호**

이 소호의 범위는 신나모뎀 제이라니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의 나무나 관목의 어린 가지의 속껍질인 계피[보통 스리랑카(실론) 타입·세이셸 타입과 마다가스카르 타입 계피로 알려져 있다]로 한정한다.

일반 상업적 등급으로 퀴(quills)·퀴링(quillings)·페더링(featherings)과 칩(chips)이 있다.

09.07 -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0907.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7.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정향나무(clove tree)의 모든 열매(뚜렷하지는 않지만 정향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
- (2) 정향(clove)(성숙하기 전에 딴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햇볕에 말린 것)
- (3) 가늘고 회색빛갈의 향기가 짙은 정향의 꽃대

이 호에는 정향(clove) 나무껍질과 잎은 **제외한다(제 1211호)**.

09.08 - 육두구(肉荳蔻) · 메이스(mace) · 소두구(小荳蔻)

- 육두구(肉荳蔻)

0908.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8.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메이스(mace)

0908.2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8.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소두구(小荳蔻)

0908.3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8.3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육두구(肉荳蔻 : nutmeg)** : 이것은 원형이나 길다란 것이며, 껍데기를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b) **메이스(mace)** : 이것은 외피와 핵 사이에 있는 육두구의 막질(膜質)의 포피이다. 이 물질은 절단하여 스트립 모양으로 만드는데, 육두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육두구보다 훨씬 더 뚜렷하다. 이는 신선한 상태에 있어서는 밝은 적색을 나타내나, 오래되면 황색으로 변하고 각질처럼 부서지기 쉽고 반투명하게 된다. 일부 메이스는 연한 황갈색이나 백색인 것도 있다.

(c) **소두구(小荳蔻 : cardamom)**

(1) **포도 모양 소두구(grape cardamom)** : 이 종류는 송이 모양으로 엉켜서 자라기 때문에 이와같이 불려지며 때로는 송이 채로 제시하나 일반적으로는 포도알 정도의 크기를 가진 낱알로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너트는 얇은 막질로 불록하게 싸여 있는 삼면을 가진 백색의 원형이다. 이들은 쓰고 매운 맛이 있으며 방향성이 높은 씨(種)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세 부분의 내부로 나누어져 있다.

(2) **소형 소두구 · 중형 소두구** : 이것은 구조나 특성이 포도 모양 소두구와 흡사하나 조금 더 길쭉한 삼각형이다.

(3) **대형 소두구** : 이것은 길이가 27mm ~ 40mm인 삼각형 모양으로서 갈색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4) **말라구타 페퍼(Malaguetta pepper)나 “grain of paradise”(Aframomum melegueta)** : 이들은 대개가 껍데기를 벗긴 상태로 제시하며, 작고 길쭉하며 각이진 종자로서, 그 표면은 거칠지만 유약을 바른 것처럼 빛이 난다. 이들은 향기는 없으나 쓰며 후추와 비슷한 매운 향기를 갖고 있다.

09.09 - 아니스(anise) · 대회향(大茴香) · 회향(茴香) · 코리앤더(coriander) · 커민(cumin) · 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0909.2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9.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커민(cumin)의 씨

0909.3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9.3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아니스(anise) · 대회향(大茴香) · 캐러웨이(caraway) ·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9.6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이들 열매나 씨는 향신료 · 공업용(예: 증류용)과 의약용으로 사용된다. 그들이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 제조용으로 조합된(예: 작은 주머니)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은(특히 아니스씨의 경우) 이 호에 남는다.

이 호에 열거된 **아니스(anise)의 씨** : 계란형으로서, 길이로 줄무늬가 있고, 회녹색이며, 아주 독특한 향미와 방향성의 향기를 가진 녹색 아니스(green anise)이다. **바디안(badian)**은 스타아니스(star anise)이다.

코리앤더(coriander) · 커민(cumin)과 캐러웨이(caraway)의 씨 : 미나리 과에 속하는 특정 식물의 방향성의 씨로서 주로 리큐르(liqueurs)의 조제에 사용한다.

회향(茴香)의 씨(fennel seed) : 식용 식물로부터 얻어지며, 강하고 상쾌한 냄새를 발산하는 연회색의 것과 아주 독특한 감미향을 지닌 연한 녹색의 것이 있다.

주니퍼(juniper)의 열매 : 자청색으로 얇게 물들여진 진한 암갈색이며, 수지질의 더스트(dust)로 덮여져 있다. 이들은 쓰고 약간 단맛을 갖는 연분홍색의 방향성 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세 개의 작고 대단히 단단한 씨를 둘러싸고 있다. 이 열매는 여러 가지의 알코올 음료(예: 진)와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나 여러 가지 식품조제에 있어 그 향미로 사용하며, 또한 정유(essential oil)의 추출에도 사용한다.

09.10 - 생강 · 사프란(saffron) · 심황[강황(薑黃)] · 타임(thyme) · 월계수 잎 · 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 생강

0910.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10.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910.20 - 사프란(saffron)

0910.30 - 심황[강황(薑黃)]

- 그 밖의 향신료

0910.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0910.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생강**(신선한 생강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염수로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포함한다) : 시럽에 담가 보존처리한 것을 **제외한다(제2008호)**.
- (b) **사프란(saffron)** : 이것은 샤프론 크로커스[saffron crocus(*Crocus sativus*)]꽃의 건조된 주두(柱頭)와 화주(花柱)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강하고 예리하며 산뜻한 향기를 지닌 것으로서 오렌지색과 약간 유사한 색의 분말로 제시한다. 이것은 불안정한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조미료 · 제과와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 (c) **심황이나 강황(*Curcuma longa*)** : 선황색이기 때문에 때때로 “인도사프란(Indian saffron)” 으로 잘못 불리워지는 경우가 있으며 ; 강황의 근경(根莖)은 원래 모양으로 거래하기도 하지만 가루로 더 많이 거래한다.
- (d) **타임**[야생타임(wild thyme)을 포함한다]**과 월계수의 잎**(건조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e) **카레 분말** : 심황(강황) · 그 밖의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코리앤더 · 흑후추 · 커민 · 생강 · 정향)와 비록 이 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하는 그 밖의 조미물질(예: 마늘 가루)을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것.
- (f) **딜(dill : *Anethum graveolens*)의 씨 · 호로파(fenugreek : *Trigonella foenum graecum*)의 씨**
- (g) 혼합물의 각 성분이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의 각각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 (예: 제0904호의 후추와 제0908호 물품의 혼합물)

제 10 류

곡물

주:

-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낱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퀴노아로서 그 밖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제1008호에 분류한다.
-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7류).



소호주:

- "듀럼종 밀(durum wheat)"이란 트리티쿰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쿰 듀럼(*Triticum durum*)종과 염색체수(28개)가 같은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cereal grain)만을 분류한다(다발이나 이삭으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다). 성숙되기 전에 베어낸 곡물로부터 얻는 곡립과 완전한 외피가 붙어있는 곡립은 보통의 곡물과 같이 분류한다. 미숙한 곡물은(제7류의 스위트콘은 제외한다) 채소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퀴노아로서 그 밖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제1008호에 분류한다. 그 밖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가공(해당 호의 해설 참조)을 한 곡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10.01 - 밀과 메슬린(meslin)(+)

- 듀럼종 밀(Durum wheat)

1001.11 -- 종자

1001.19 -- 기타

- 기타

1001.91 -- 종자

1001.99 -- 기타

밀의 주요한 종류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보통의 밀** : 연질(soft)·반경질(semi-hard)이나 경질(hard)의 것(일반적으로 가루 상태의 단면을 갖고 있는 것) ;

(2) **듀럼종 밀**(durum wheat)(이 류의 소호주 제1호를 참조) : 듀럼종의 밀은 대개 갈다황색부터 갈색까지 띠고 있다. 듀럼종의 밀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반투명하고 뿔같은 유리 모양의 구조를 나타낸다.

스펠트(spelt) : 탈곡 작업을 한 후에도 아직 껍질이 남아 있는 상태의 갈색의 작은 곡립(grain)을 가지고 있는 밀의 일종으로 이 호에 분류한다.

메슬린(meslin) : 일반적으로 밀과 호밀을 2 : 1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다.



[소호해설]

소호 제1001.11호와 제1001.91호

소호 제1001.11호와 제1001.91호에서 “종자(seed)”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밀(wheat)이나 메슬린(meslin)만을 포함한다.

10.02 - 호밀(+)

1002.10 - 종자

1002.90 - 기타

호밀(rye)은 약간 가늘고 긴 곡물로서 연회색이나 녹회색이며 그 분말은 회색이다.

맥각[ergot(깜부기)]으로 알려져 있는 균성 생장물을 가지고 있는 호밀은 **제외한다(제1211호)**.



[소호해설]

소호 제1002.10호

소호 제1002.1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과중용으로 간주하는 호밀(rye)만을 포함한다.

10.03 - 보리(+)

1003.10 - 종자

1003.90 - 기타

보리(大麥)는 밀보다 다육질의 곡물이며, 주로 가축사료용·맥아의 제조용이나 정맥하여 스프나 식품의 조제에 사용한다.

겉보리 종류(bracteiferous varieties of barley) : 성장하는 도중에 보리알이 껍데기와 강하게 밀착되기 때문에 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로는 껍데기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다른 곡물과 상이하다. 색깔은 보리짚 모양의 황색이며, 끝이 뾰족한 종류의 겉보리(피맥)는 껍데기가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로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껍데기가 제거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104호)**. 이러한 외피를 제거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과피(pericarp)의 부분까지도 제거되는 밀링공정(milling process)을 필요로 한다.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갖고 있지 않은 종류의 보리는 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을 하는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싹이 돋은 보리[맥아(麥芽)], 볶은 맥아(제1107호 해설 참조)

(b) 볶은 보리(커피 대용물)(제2101호)

(c) 배소공정(kilning process) 중 싹이 돋은 곡물로부터 분리시킨 맥아의 싹과 그 밖에 양조박[곡물이나 홉(hop) 등의 잔유물](제2303호)



[소호해설]

소호 제1003.10호

소호 제1003.1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보리(barley)만을 포함한다.

10.04 - 귀리(+)

1004.10 - 종자

1004.90 - 기타

귀리(oat)의 중요한 두 가지 종류는 회색(또는 흑색) 귀리와 백색(또는 황색) 귀리이다.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을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상적인 처리나 취급(탈곡·수송·재적재 등)의 과정에서 영포 끝(glume tip)이 제거된 귀리도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004.10호

소호 제1004.1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귀리(oat)만을 포함한다.

10.05 - 옥수수(+)

1005.10 - 종자용

1005.90 - 기타

옥수수에는 서로 다른 색(황금색·백색 때로는 적갈색이나 잡색)과 서로 다른 모양(둥근 것·강아지 이빨 모양의 것·평평한 것 등)을 가진 것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호에는 스위트콘(sweet corn)은 **제외한다(제7류)**.



[소호해설]

소호 제1005.10호

소호 제1005.10호에서 “종자”는 소관 국가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옥수수만을 포함한다.

10.06 - 쌀

1006.10 - 벼

1006.20 - 현미

1006.30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1006.40 - 썬미(broken rice)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벼(paddy나 rough rice)** : 외피로 꼭 싸여있는 쌀 알
- (2) **현미(cargo rice)** :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pericarp)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 (3) **반정미** : 부분적으로 외과피를 제거한 쌀이다.
- (4) **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 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

정미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연마하고 광택을 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마과정(polishing process : 정미의 거친 표면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공정)은 브러시 머신(brush machine)이나 원추형의 연마기(polishing con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광택공정(glazing)”이란 특수한 광택통(glazing drum)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활석분으로 곡립을 도포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카몰리노(Camolino)”쌀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기름의 얇은 막으로 도포한 정미로 이루어져 있다.

- (5) **썬미(broken rice)** : 즉, 도정과정 중 파쇄된 쌀라기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강화미(enriched rice)** : 비타민 류를 도포하거나 주입시킨 정미를 대단히 적은 비율(약 1%)로 보통의 정미에 섞은 혼합미
-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찌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과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 정미·연마 등을 한 그 러한 쌀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분부터 35분까지 소요된다.

곡물 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완전히 조리하거나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precooked rice)은 **제1904호**로 분류한다. 부분적으로 조리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5~12분이 소요되며, 반면에 완전히 조리한 쌀은 단지 물에 담궈서 잠깐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된다. 쌀을 튀겨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튀김쌀(“puffed” rice)은 **제1904호**로 분류한다.

10.07 - 수수(+)

1007.10 - 종자

1007.90 - 기타

이 호에는 수수(*grain sorghums*)라고 알려진 솔겔(*sorghums*)의 변종만을 분류하며, 이것의 곡립은 식용의 곡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에는 *caffrorum*(kafir) · *cernuum*(white durra) · *durra*(brown durra)와 *nervosum*(kaoliang)과 같은 솔겔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halepensis*(halepense)와 같은 사료용 솔겔(건초나 생목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 · *sudanensis*(*sudanense*)와 같은 목초용 솔겔(목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saccharatum*과 같은 단 솔겔(시럽이나 당밀 제조에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종용 종자로 제시하는 것은 **제1209호**에 분류한다. 한편, 사료용 솔겔과 목초용 솔겔은 **제1214호**에 분류하고, 단 솔겔(sweet sorghum)은 **제1212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빗자루수수(*Sorghum vulgare var. technicum*)는 **제외하며, 제1404호**로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007.10호

소호 제1007.1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수수(*grain sorghum*)만을 포함한다.

10.08 - 메밀 · 밀리트(millet) · 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1008.10 - 메밀
 - 밀리트(millet)
- 1008.21 -- 종자
- 1008.29 -- 기타
- 1008.3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 1008.40 - 폰리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속]
- 1008.5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 1008.60 - 라이밀(triticale)
- 1008.90 - 그 밖의 곡물

(A) 메밀 · 밀리트(millet) · 카나리시드(canary seed)

- (1) **메밀(buckwheat)** : 이 곡물은 또한 검은 밀로 알려진 것으로써 대부분의 다른 곡물이 포함되는 화본과(*Gramineae* family)와는 전혀 다른 삼과(*Polygonaceae* family)에 속한다.
- (2) **밀리트(millet)** : 연한 황색의 원형 곡물. 이것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세타리아(*Setaria*)속 · 페니세툼(*Pennisetum*)속 · 에치노클로아(*Echinochloa*)속 · 엘레우신(*Eleusine*)속[엘레우신 코라카나(*Eleusine coracana*(Coracan))]. 파니쿰(*Panicum*)속 · 디지타리아 상귀날리스(*Digitaria sanguinalis*)와 에라그로스티스 테프(*Eragrostis tef*).
- (3) **카나리시드(canary seed)** : 광택이 나는 밀짚 색깔의 씨(種)로서, 길죽하고 양쪽 끝이 뾰족하다.

(B) 그 밖의 곡물

이 그룹에는 교잡곡물[예: 밀과 호밀의 잡종인 라이밀(triticale)]을 포함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008.21호

소호 제1008.21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밀리트(millet)만을 포함한다.

제 1 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제2101호)
 - 나.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
 - 라.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 마. 의약품(제30류)
 - 바. 조제향료·화장품, 화장품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한다.
 -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나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곡물명 (1)	전분 함유량 (2)	회분함유량 (3)	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마이크론 (4)	500마이크론 (5)
밀 과 호 밀	45%	2.5%	80%	-
보 리	45%	3%	80%	-
귀 리	45%	5%	80%	-
옥수수와 수수	45%	2%	-	90%
쌀	45%	1.6%	80%	-
메 밀	45%	4%	80%	-

제2부
제11류

3.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나.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과 메밀의 제분생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나 제1102호의 고운 가루와 제1103호나 제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 제2호가목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예: 맥아 제조, 전분이나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일 등)에서 얻는 물품

이 류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 대용물로 조제된 볶은 맥아(제0901호나 제2101호)

(b) 곡물의 껍질(제1213호)

(c)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와 전분

(d) 타피오카(tapioca)(제1903호)

(e)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만든 퍼프드라이스(puffed rice)·콘플레이크·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불거 밀(bulgur wheat)로서 가공한 낱알상의 것(제1904호)

(f) 제2001호, 제2004호와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g) 곡물이나 채두류(菜豆類)를 체질(sifting)이나 제분공정, 그 밖의 가공을 할 때 생기는 잔유물(제2302호)

(h) 의약품(제30류)

(ij) 제33류의 물품(제33류의 주 제3호와 제4호 참조)

11.01 -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체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이들 체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곡물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팽창제 혼합 밀가루(self-raising flour)].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글루텐을 첨가함으로써 영양가를 보다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베이커리용 개량제·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공업이나 제지공업과 같은 특정공업·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된 가루는 **제외한다**(보통 **제1901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와 혼합된 가루는 **제외한다**(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계산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이상의 것은 **제1806호**에 분류하고, 그 미만인 것은 **제1901호**에 분류한다).

11.02 -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 - 옥수수가루

1102.90 - 기타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고운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팽창제 혼합 곡물가루(self-raising flour)].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된 고운 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베이커리용 개량제와 동물 사료의 제조와 섬유나 제지공업·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되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된 곡물의 고운 가루는 **제외한다**(대개 **제1901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와 혼합된 고운 가루는 **제외한다**(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계산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이상의 것은 **제1806호**에 분류하고, 그 미만인 것은 **제1901호**에 분류한다).

11.03 - 곡물의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 -- 밀로 만든 것

1103.13 -- 옥수수로 만든 것

1103.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1103.20 - 펠릿(pellet)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겉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1호나 제1102호의 고운 가루, 이 호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와 제1104호의 물품 간의 구별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1)항의 두번째 단락]을 참고한다.

곡물의 부순 알곡(cereal groat)은 곡물을 거칠게 부술 때 생기는 작은 조각이나 가루 모양의 곡립이다.

거친 가루(meal)는 고운 가루보다 거친 것으로서 최초의 제분작업 후에 제1차로 체로 쳐서 얻어지거나, 최초 제분에서 생긴 부순 알곡을 다시 갈고 재차 체로 쳐서 얻는 것이다.

듀럼종 밀의 거친 가루(meal), 즉 세몰리나(semolina)는 마카로니·스파게티(spaghetti)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중요한 원료로 쓰인다. 또한 세몰리나는 식료품으로도 직접 사용한다 [예: 세몰리나 푸딩(semolina pudding) 제조용].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양조용의 첨가물로서 사용하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예: 옥수수의 것)를 포함한다.

펠릿(pellet)은 이 류의 곡물을 제분할 때 얻어진 물품을 직접 압축하거나 점결제(중량의 3% 이하의 비율)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이다(제2부 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곡물의 제분할 때 생기는 펠릿화된 잔재물(palletised residue)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3류)**.

11.04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 -- 귀리로 만든 것

1104.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1104.22 -- 귀리로 만든 것

1104.23 -- 옥수수로 만든 것

1104.2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1104.3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곡물의 조제되지 않은 모든 제분 생산품이 포함되나, 고운 가루(제1101호와 제1102호)·부순 알곡·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제1103호)과 그 잔유물(제2302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과 위에 규정한 제외하는 물품의 구분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1)항을 참고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리) : 이것은 원래 모양의 곡물(껍질을 제거하였는지에 상관없다)·거칠게 빻은 곡물이나 아래의 (2)와 (3)항과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 “콘 플레이크(corn flake)”형의 아침 식사용 식품은 바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리된 조제품으로서 이와 유사하게 조리된 곡물처럼 제1904호에 해당한다.

(2) **귀리·메밀과 밀리트**[껍질을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 이외의 어떤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

(3) **과피(pericarp)(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 : 고운 가루 같은 낱알이 보일 수도 있다. 브랙티퍼러스(bracteiferous)종 보리의 곡립은 그들의 껍질을 제거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너무나 견고하게 곡물 입자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에 의해서는 껍질을 분리할 수 없고, 단지 잘게 부수는 것(분쇄)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제1003호의 해설서 참조)].

(4) **진주 모양인 곡물**(주로 보리) : 즉, 과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서 곡물의 끝이 보다 원형으로 된 것이다.

(5) **거칠게 빻은 곡물** : 즉, 이것은 단편으로 부수거나 절단한 곡물(껍질을 벗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과편이 보다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부순 곡물(groats)과 상이하다.

- (6) **곡물의 씨눈** :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나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지게 되며,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탈지(脫脂)시키거나 열처리한다. 그 용도에 따라서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하거나 잘게 부수며(거칠게 또는 고운 가루로), 예를 들어 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양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타민류를 첨가하기도 한다.

원래 모양 그대로이거나 압착된 씨눈(germ)은 일반적으로 기름의 추출에 사용한다.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잘게 부순 씨눈은 식품(비스킷이나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식이요법용의 조제품 등)·사료(사료첨가물의 조제)와 의료용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곡물의 씨눈(cereal germ)으로부터 기름을 추출한 잔재물(residue)은 **제23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현미, 반정미나 정미(연마·광택·반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쉐미(broken rice)(**제1006호**)
- (b) 퀴노아(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1008호**)
- (c) 불거 밀(bulger wheat)(가공한 알갱이 모양의 것)(**제1904호**)

11.05 -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1105.10 -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1105.20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이 호에는 말린 감자(dried potato)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펠릿(pellet) 모양으로 제시하는 것에 적용한다. 이 호의 고운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는 생감자를 증기로 찌서 으갠 다음 이를 고운 가루, 가루나 알갱이 모양이나 작은 플레이크로 절단한 얇은 시트로 건조시켜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 호의 펠릿은 보통,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조각을 응결시켜서 얻어진다.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 유화제나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단순히 건조되거나 탈수나 증발건조된 감자로서 그 이상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것(**제0712호**)
- (b) 감자전분(**제1108호**)
- (c) 감자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tapioca) 대용물(**제1903호**)

11.06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6.1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106.20 -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106.30 - 제8류 물품의 것

(A)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푸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탈지(脫脂)하지 않은 대두의 고운 가루(제1208호)

(b)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고운 가루(제1212호)

(c) 채소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하는 수프와 브로드(액체 상태·고체 상태·가루 상태의 것)(제2104호)

(B)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이들 물품은 사고야자의 심(pith)이나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잘게 부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 이 처리로 인하여 전분이 호화 직전의 상태(사전 젤라틴화: pregelatinisation)로 되는 때가 있다.

이 호에는 이러한 원료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제외한다**[사고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가끔 “사고 가루(sago flour)”으로 호칭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전분은 제1108호에 해당되며, 전분과는 달리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빌 경우 뽀드득 거리지 않기 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고운 가루와 구별한다.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류의 펠릿(pellet)화한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도 **제외한다(제0714호)**.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과실 껍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타마린드 가루(tamarind powder)는 **제외한다(제3004호)**.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anti-oxidant)나 유화제(emulsifier)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고(sago)야자의 심(pith)(제0714호)

(b) 타피오카(tapioca)로 알려진 조제식품(제1903호)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 - 볶지 않은 것

1107.20 - 볶은 것

맥아(malt)는 싹이 난 곡립(대개 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 열풍로[맥아로(malt-kiln)]에서 계속 건조된 것이다.

맥아는 양 끝단 사이에 가는 줄이 있고 바깥쪽은 황갈색이고 안쪽은 백색이다. 이것은 백아질과 같은 흔적이 있고, 발아하지 않은 곡물입자와는 달리 물에 뜨며, 또한 쉽게 가루로 부서진다. 맥아는 조리된 곡물과 같은 독특한 냄새와 달콤한 향기가 난다.

이 호에는 원래 모양의 맥아·잘게 부순 맥아와 맥아의 가루를 분류한다. 또한 볶은 맥아(예: 맥주의 착색에 사용하는 것)도 분류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예: **제1901호**의 맥아추출물(extract)과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과 커피대용물(**제2101호**)로 만든 볶은 맥아]은 **제외한다**.

11.08 - 전분과 이눌린(inulin)

- 전분

- 1108.11 -- 밀로 만든 것
- 1108.12 -- 옥수수로 만든 것
- 1108.13 -- 감자로 만든 것
- 1108.14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 1108.19 -- 그 밖의 전분
- 1108.20 - 이눌린(inulin)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starch)**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밀·쌀)·어떤 종류의 지의류·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뿌리[감자·매니옥(manioc)·참뿌리]와 사고(sago)야자의 심(pith)이다.

전분은 백색 무취의 가루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요오드(iodine)를 가하면 진한 암청색을 나타낸다[그러한 경우 붉은 갈색을 가지는 아밀로펙틴 전분(amylopectin starch)은 **예외**이다]. 편광현미경으로 보면, 낱알이 특징적으로 어두운 편광교차를 나타낸다. 이들은 냉수에는 녹지 않으나, 그들의 젤라틴화 온도(대부분의 전분이 약 섭씨 60℃) 이상의 가열된 물에서 그 낱알이 분해하여 전분 페이스트를 형성한다. 전분은 다른 호에 분류하는 광범위한 물품이 되도록 상업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예: 변성전분·볶은 용해성 전분·텍스트린·말토-텍스트린·맥아당·포도당). 이들은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산업, 특히 식품·종이·종이가공과 섬유산업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을 포함하며 ;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요오드(iodine)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달리아 뿌리와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

이 호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제1901호**의 전분 조제품
- (b) 타피오카와 그 대용물(전분으로 조제한 것)(**제1903호** 해설 참조)
- (c) 조제 향료나 화장용품류로 조제된 전분(**제33류**)
- (d) **제3505호**의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 (e) 전분으로 조제한 글루(glues)(**제3505호**나 **제3506호**)
- (f) 전분으로 조제한 광택제와 완성가공제(**제3809호**)
- (g) 전분으로부터 분별(fractionation)에 의해서 얻어진 유리 아밀로펙틴(amylopectin)과 유리(遊離) 아밀로스(isolated amylose)(**제3913호**)

11.09 -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글루텐(gluten)은 밀가루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다른 성분(전분 등)으로부터 단순히 수성 분리함으로써 추출된다. 이것은 희끄무레한 점성의 액체 상태나 페이스트(paste) 상태(“moist” 글루텐)이거나 크림색의 분말(dry 글루텐)로 생산된다.

글루텐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의 혼합물로서 구성되며, 그 주된 것은 **글리아딘(gliadin)**과 **글루테닌(glutenin)**(두 가지 합계 85%부터 95%까지)이다. 이들 두 단백질의 존재는 밀의 글루텐의 특성으로, 밀의 글루텐을 적당한 비율로 물과 혼합할 때 탄력성(elasticity)과 가소성(plasticity)을 가지게 한다.

글루텐은 주로 어떤 종류의 빵과 비스킷·마카로니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식이요법의 조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곡물 가루의 단백질을 높이는데 사용한다. 또한 이것은 어떤 고기 조제품의 접결체로서 사용하며, 어떤 글루의 조제와 황산 글루텐이나 인산글루텐·가수분해한 식물성 단백질이나 글루타민산 나트륨과 같은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글루텐의 첨가로 영양가를 높인 밀가루(**제1101호**)
- (b) 밀 글루텐으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일반적으로 **제3504호**)
- (c) 글루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된 밀의 글루텐이나 섬유공업의 광택제나 완성가공체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된 밀의 글루텐(**제3506호**나 **제3809호**)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너트(palm nut)와 핵(核)·목화씨·피마자·참깨·겨자씨·잇꽃씨·양귀비씨·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 포함된다. 제0801호나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7류나 제20류)는 제외한다.
- 제1208호에는 탈지(脫脂)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이나 탈지한 것의 전체나 일부분에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 다만, 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허(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과종용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과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채두류(菜豆類)와 스위트콘(제7류)
 - 제9류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 곡물(제10류)
 -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
- 제1211호에는 특히 바질(basil)·보리지(borage)·인삼·히습(hyssop)·감초·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sage)·썬썬(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제30류의 의약품
 -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
 -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제1212호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
 - 제3101호나 제3105호의 비료



소호주:

- 소호 제1205.10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의 비휘발성 기름과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함유량이 그램당 30마이크로몰 미만인 고형(固形)성분을 만들어 내는 유채(rape, colza)씨를 말한다.

총설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는 식용이나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이나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한다(이들은 과종용이나 그 밖의 용도로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들 호에는 **제0801호나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올리브(**제7류나 제20류**)·채유할 수 있으나 채유용 이외의 용도에 주로 쓰이는 어떤 종자와 과실, 예를 들어, 살구·복숭아나 자두의 핵(核 : kernel)(**제1212호**)과 코코아두(**제1801호**) 등은 **분류하지 않는다**.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래 모양·부서진 것·잘게 부순 것·탈곡한 것·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 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 factor)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천연 생산품으로서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들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재물(기름을 짠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제2304호, 제2305호나 제2306호)**.

12.01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 - 종자

1201.90 - 기타

대두(soya bean)는 식물성 기름의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다.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총설 참조).

그러나, 이 호에서는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볶은 대두는 **제외한다(제2101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1201.10호

소호 제1201.1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대두(soya bean)만을 포함한다.

12.02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 - 종자

- 기타

1202.4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202.42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ground-nut)[피넛(peanut)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꼬투리를 벗긴 것인지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은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도 있다(총설 참조). 볶거나 그 밖의 조리한 땅콩은 **제20류**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202.30호

소호 제1202.3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과중용으로 간주하는 땅콩(ground-nut)만을 포함한다.

12.03 - 코프라(copra)

코프라(copra)는 야자유(coconut oil)를 짜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건조한 코코넛 과육으로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호에는 건조한 코코넛, 즉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찢어서 말린 코코넛 과육은 **제외한다(제0801호)**.

12.04 -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아마씨(linseed), 즉, 아마(flax plant)의 종자는 건성유(drying oil) 채취의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이다.

12.05 -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1205.90 - 기타

이 호에는 유채(rape, colza)씨[브라씨카(*Brassica*)속의 몇 가지 종의 씨, 특히 브라씨카 나푸스(*B. napus*)와 브라씨카 라파(*B. rapa*)(또는 *브라씨카 캄페스트리스*(*B. campestris*)]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기존 유채씨 뿐만 아니라 저에루크산 유채씨도 함께 분류한다. 저에루크산 유채씨, 예를 들면, 케놀라씨나 유럽산 유채씨인 “더블제로(double zero)”는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2% 미만의 비휘발성유와, 글루코시노레이트 함유량이 그램당 30 마이크로몰 미만인 고형(solid) 성분을 만들어 내는 유채씨를 말한다.

12.06 -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일반적인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씨를 분류한다.

12.07 -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1207.10 - 팜너트(palm nut)와 핵(核)
 - 목화씨
- 1207.21 -- 종자
- 1207.29 -- 기타
- 1207.30 - 피마자
- 1207.40 - 참깨
- 1207.50 - 겨자씨
- 1207.6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 1207.70 - 멜론 종자
 - 기타
- 1207.91 -- 양귀비씨
- 1207.99 -- 기타

이 호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지방과 기름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종자(seed)와 과실(fruit)을 분류한다(제 1201호부터 제 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제외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 |
|---|-----------------------------------|
| 바바수핵(babassu kernel) | 모우라씨(mowra seed) |
| 너도밤나무열매(beech nut) | 겨자씨 |
| 캔들너트(candlenut) | 니거씨(niger seed) |
| 카라파너트(예: touloucouna nut) | 오이티시커씨(oiticica seed) |
| 피마자 | 팜너트와 핵 |
| 대목풍자(chaulmoogra seed) | 들깨 |
| 목화씨 | 피직[physic(pulza)]씨 |
| 과두씨(croton seed) | 양귀비씨 |
| 금달맞이 꽃씨[오에노테라 비엔니스(<i>Oenothera biennis</i>)와 오에노테라 라마르키아나(<i>Oenothera lamarckiana</i>)종의 것] | 잇꽃씨 |
| 포도씨 | 참깨 |
| 삼씨 | 시어너트(Karite nut) |
| 일리페씨 | 스털린지아(stillingia)씨 |
| 케이폭씨(kapok seed) | 차씨(tea seed) |
| | 유동의 씨(tung nut 또는 oleococca seed) |



[소호해설]

소호 제1207.21호

소호 제1207.21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목화씨(cotton seed)만을 포함한다.

12.08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 - 대두로 만든 것

1208.90 - 기타

이 호에는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잘게 부수어 얻어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기름을 짠 것의 전체나 일부분에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도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피넛 버터(peanut butter)(**제2008호**)

(b)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탈지(脫脂)한 것인지,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2103호**)

(c) 탈지(脫脂)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것은 **제외한다**)(**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12.09 - 파종용 종자 · 과실 · 포자(孢子)

- 1209.10 - 사탕무 종자
 - 사료용 식물의 종자
- 1209.21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 1209.22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 1209.23 -- 페스큐(fescue) 종자
- 1209.24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 1209.25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 1209.29 -- 기타
- 1209.3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 기타
- 1209.91 -- 채소 종자
- 1209.99 -- 기타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종자(seed) · 과실(fruit) · 포자(孢子 : spore)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의 해설서 끝에 열거된 물품은 여기에 **분류하지 않는데**, 파종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이 표의 다른 곳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사탕무 종자 · 풀(grass)이나 그 밖의 목초종자[루우산(lucerne) · 세인포인 · 클로버(clover) · 페스큐(fescue) · 라이그래스(rye grass) · 켄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 · 티머시그래스(timothy grass) 등] · 관상용 화초의 종자 · 채소종자 · 산림수의 종자(씨 있는 솔방울을 포함한다) 수의 종자 · 벳치(vetches)의 씨[비시아 파바(*Vicia faba*)종, 즉 누에콩과 말먹이 누에콩의 것을 **제외한다**] · 루핀의 씨 · 타마린드 종자 · 담배종자나 제1211호의 물품을 얻는 식물의 종자(**그 자체가**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특히 목초 종자)은 종이 지지물 위에 고운 비료 알갱이와 함께 뿌리고 나서 강화한 플라스틱 체(mesh)에 의해 적정한 곳에 채워지는 고운 충전 재료층으로 덮여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버섯의 종균(spawn)(**제0602호**)
- (b) 채두류(菜豆類)와 스위트콘(sweet corn)(**제7류**)
- (c) **제8류**에 해당되는 과실
- (d) **제9류**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 (e) 곡류(**제10류**)
- (f)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 (g) 종자나 과실 그 자체가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제1211호**)
- (h) 로커스트콩(locust bean)(**제1212호**)

12.10 -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0.10 - 홉(hop cones)[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1210.20 - 홉(hop cones)[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홉(hop cone) : 홉 식물[후물루스 루플루스(*Humulus lupulus*)]의 비늘같은 솔방울 모양으로 꼬리 모양 꽃차례(catkins) 또는 꽃이다.

이들은 주로 양조공업에 있어서 맥주에 향미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나 의약용으로도 사용한다. 홉은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이라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즉,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 홉을 덮고 있는 황색의 수지 상태의 가루(resinous powder)로서 특히 홉의 특성을 부여하는 방향성의 쓴맛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인 홉 대용품으로서 양조용과 의약용에 사용한다. 이는 건조 후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홉으로부터 분리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홉 추출물(extract)(**제1302호**)

(b) 홉 박(spent hop)(**제2303호**)

(c) 홉 정유(**제3301호**)

12.11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1211.20 - 인삼
- 1211.30 - 코카잎
- 1211.40 - 양귀비줄기
- 1211.50 - 마황(麻黃)
- 1211.60 - 아프리카 체리(*Prunus africana*)나무의 껍질
- 1211.90 - 기타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의약품·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나무껍질·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종자(제 1201호부터 제 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가루(powder)로 한 것·비벼서 뭉개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의 물품을 알코올에 담근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식물(plant)과 수목(tree)·관목(bush·shrub)이나 그 밖의 식물의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한다)은 앞에서 설명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이들 목적에 적합한 추출물(extract)·알칼로이드(alkaloid)나 정유(essential oil)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불휘발성기름(fixed oil)의 추출에 사용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은 **제외한다**. 이들은 비록 그 불휘발성기름을 이 호에 열거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 1201호부터 제 1207호까지**에 분류한다.

이 표의 분류상 다른 호에 열거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 감귤류의 껍질(제 0814호); 바닐라두·정향·아니스의 씨·대회향의 씨와 그 밖의 물품(제 9류); 흙(제 1210호); 제 1212호의 치커리뿌리; 천연의 검·수지·검 수지와 올레오레진(제 1301호)

살아있는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와 명확하게 재배용으로 마련된 살아있는 묘목·구근·근경 등과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꽃과 잎 등은 **제 6류**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칩(chip) 모양·깎아낸 부스러기(shavings)·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 모양의 목재로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형태인 목재는 **제외한다(제 44류)**.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tea)”]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다른 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 2106호)**.

또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물품은 **제 3003호·제 3004호·제 3303호부터 제 3307호까지나 제 3808호**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a) 이 호의 물품을 혼합하지는 않았지만,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향료용·살충용·살균용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
- (b) 앞에서 설명한 (a)항에 열거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합된 물품

그러나, 주로 의료용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식물성 생산품이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서, 그것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면(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이 반드시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3003호나 제3004호에서의 “의약품(medicament)”이라는 말은 치료나 예방용의 물품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더 넓은 의미의 “의료용(pharmacy)”이라는 용어는 의약품(medicament)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강화식품·혈액형 분류용 시약)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 물품도 **제외한다**.

- (a) 조미용 소스에 사용하는 종류로서, 이 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이며서 각기 다른 종(種)으로 구성된 혼합물(**제2103호**)
- (b) 직접 음료용 향미제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extract)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다음의 물품
 - (i) 이 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이며서 각기 다른 종(種)으로 구성된 혼합물(**제2106호**)
 - (ii) 이 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다른 류(제7류·제9류·제11류)에 해당하는 식물성 생산품을 혼합한 것(**제9류나 제2106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부자(附子)**(아코니툼 나펠러스) : 뿌리와 잎
- 엠브렛 사향**(히비스쿠스 아벨모스쿠스) : 종자
- 안젤리카**(아르찬젤리카 오피시날리스) : 뿌리와 종자
- 앙고스투라**(갈리페아 오피시날리스) : 나무 껍질
- 아라로바**(안디라 아라로바) : 가루
- 아르니카**(아르니카 몬타나) : 뿌리·줄기·잎과 꽃
- 바질**(오시멈 바실리쿰) : 꽃과 잎
- 월귤나무**(우바 우르시) : 잎
- 벨라돈나**(아트로파 벨라도나)(로 만든 약) : 초·뿌리·장과(漿果)·잎과 꽃
- 볼도**(페우무스 볼두스) : 잎
- 보리지**(보라고 오피시날리스) : 줄기와 꽃
- 브리오니아**(브리오니아 디오이카) : 뿌리
- 부추**(바로스마 베틀리나, 바로스마 세라티폴리아와 바로스마 크레놀라타) : 잎
- 조름나물**(메니안테스 트리폴리아타) : 잎
- 우영**(아르크티움 라파) : 종자와 건조한 뿌리
- 칼라바르**(피소스티그마 베네노숨) : 콩
- 창포**(아코러스 칼라무스) : 뿌리
- 컬럼바**(자테오리자 팔마타) : 뿌리
- 대마**(大麻)(카나비스 사티바) : 초
- 카스카라 사그라다**(람누스 푸르시아나) : 나무 껍질
- 카스카릴라**(크로톤 엘루테리아) : 나무 껍질
- 계피**(桂皮)(카시아 피스톨라) : 꼬투리와 미정제의 펄프[정제 카시아 펄프(수성 추출물(extract))은 **제1302호**에 분류]
- 센타우리아**(에리트라에아 센타우리움) : 초
- 세바딜라(사바딜라)**(스초에노카울론 오피시날레) : 종자
- 카모마일**(마트리카리아 카모밀라) : 꽃
- 체노포디움** : 종자
- 벗나무** : 줄기
- 체리 라우렐**(프루너스 바우로세라서스) : 장과
- 기나나무** : 나무 껍질
- 정향**(카리오필러스 아로마티쿠스) : 나무 껍질과 잎
- 코카나무**(에리트록실론 코카와 에리트록실론 트룩실렌스) : 잎
- 코콜루스 인디쿠스(인도베리)**(아나미르타 파니쿨라타) : 과실
- 코실라나**(구아레아 루스비) : 나무 껍질
- 콜키쿰**(콜키쿰 아우툼날레) : 구경(球莖)과 종자
- 폴로신티**(시트룰러스 폴로신티스) : 과실
- 킴프리**(십피툼 오피시날레) : 뿌리
- 콘두란고**(마르스데니아 콘두란고) : 나무 껍질
- 개밀(트리티쿰)**(아그로피룸 레펜스) : 뿌리

- 쿠베(바르바스코나 텀보)**(론초카르푸스 니코우) : 나무 껍질과 뿌리
쿠베바(쿠베바 오피시날리스 미쿠엘이나 피페르 쿠베바) : 가루
다미아나(투르네라 디푸사) : 잎
민들레(타락사쿰 오피시날레) : 뿌리
다투라 메텔 : 잎과 종자
데리스(튜바)(데리스 엘리프티카와 데리스 트리폴리아타) : 뿌리
디기탈리스(디기탈리스 푸르푸레아) : 잎과 종자
딱총나무류(삼부쿠스 니그라) : 꽃과 나무 껍질
에페드라(마황) : 줄기와 가지
호밀의 맥각(麥角)
유칼립투스(에우칼립투스 글로블러스) : 잎
프랑굴라 : 나무 껍질
푸미토리(푸마리아 오피시날리스) : 잎과 꽃
양강(良莖)(알피니아 오피시나룸) : 근경(根莖)
겐티아나(겐티아나 루테아) : 뿌리
인삼(파낙스 킨쿠에폴리움와 파낙스 진생) : 뿌리
골든셀(히드라스티스)(히드라스티스 카나덴시스) : 뿌리
구아이아쿰(구아이아쿰 오피시날레와 구아이아쿰 상크툼) : 목재
하마멜리스(풍년화)(하마멜리스 비르지니아나) : 나무 껍질과 잎
헬리보어(베라트룸 알BUM과 베라트룸 비리데) : 뿌리
사리플(히오스시아무스)(히오스시아무스 니게르) : 뿌리 · 종자와 잎
(야생의) 쓴 박하(마루비움 불가레) : 초와 줄기
히솅(히소푸스 오피시날리스) : 꽃과 잎
토근(吐根)(세파엘리스 이페카쿠아나) : 뿌리
이포모에아(이포모에아 오리자벤시스) : 뿌리
아보란디(필로카르푸스 자보란디와 필로카르푸스 마이크로필러스) : 잎
할라파(이포모에아 푸르가) : 뿌리
라벤더(라반들라 베라) : 꽃과 초
렘탄드라(베로니카 비르지니카) : 뿌리
리날로에(부르세라 델페키아나) : 목재
피나무(피목)(틸리아 에우로파에아) : 꽃과 잎
감초(클리시리자 글라브라) : 뿌리
로벨리아(좁나비 꽃)(로벨리아 인플라타) : 초와 꽃
긴 후추(피페르 롱쿰) : 뿌리와 지하경(莖)
면마(드리오프테리스 필릭스-마스) : 뿌리
아욱(말바 실베스트리스와 말바 로툰디폴리아) : 잎과 꽃
맨드레이크 : 뿌리와 근경(根莖)
마조람(아래 "야생 마조람" 참조)
마쉬멜로우(양 아욱)(알타에아 오피시날리스) : 꽃 · 잎와 뿌리
멜리사(멜리사 오피시날리스) : 잎 · 꽃과 꼭대기
박하(모든 종)
무스 드 션(오크모스)(에베르니아 푸르푸라세아)(지의류(地衣類)의 식물)
쭈(아르데미시아 불가리스) : 뿌리
호미카(마전자)(스트리코노스 녹스-보미카) : 종자
오렌지나무(시트러스 아우란티움) : 잎과 꽃
오리스(이리스 게르마니카 · 이리스 팔리다와 이리스 플로렌티나) : 뿌리
팬지 : 꽃
파튜리(포고스테몬 파트초울리) : 잎
페퍼민트(박하 참조)
소나무 : 눈(芽)
플란타고 실립 : 초와 종자
포도필럼(포도필럼 펠타툼) : 뿌리와 근경(根莖)
양귀비(파파베르 숨니페룸) : 두상화(미숙 · 건조)
백두옹(白頭翁)(아네모네 폴사틸라) : 초
제충국(除蟲菊)(크리산테뎀 시네라리아에폴리움) : 잎 · 줄기와 꽃
제충국(除蟲菊)(아나시클러스 피레트룸) : 뿌리
쿠아시아(쿠아시아 아마라와 피크라에나 엑셀사) : 목재와 나무 껍질
마르멜로(서양모과) : 종자
라타니(크라메리아 트리안드라) : 뿌리

- 식용대황**(레움 오피시날레) : 뿌리
장미 : 꽃
로우즈메리(로스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 초·꽃와 잎
운향(芸香)(루타 그라베올렌스) : 잎
세이지(살비아 오피시날리스) : 잎과 꽃
보두(스트리키노스 이그나티)
백단 : 나무토막(백색과 황색의 것)
사르사뿌리(스미락스) : 뿌리
사사프라스(사사프라스 오피시날리스) : 나무 껍질·뿌리와 목재
스카모니아(콘볼부루스 스카모니아) : 뿌리
세네가(폴리갈라 세네가) : 뿌리
센나(카시아 아쿠티폴리아와 카시아 안구스티폴리아) : 꼬투리와 잎
미끄러운 느릅나무(울무스 풀바) : 나무 껍질
까마중
해충(海蔥)(우루기네아 마리티마·우리기네아 스실라) : 구근(球根)
독말풀(다투라 스트라모니움) : 잎과 꼭대기
스트로판 치자(스트로판씨스 콤베) : 종자
쑥국화(타나세툼 불가레) : 뿌리·잎과 종자
통카(통킨)(디프테릭스 오도라타) : 콩
발레리안(발레리아나 오피시날리스) : 뿌리
베르바스쿰(멀레인)(베르바스쿰 타프서스와 베르바스쿰 플로모이데스) : 잎과 꽃
버베나 : 잎과 정단
베로니카(베로니카 오피시날리스) : 잎
비부르눔(비부르눔 프루니폴리움) : 뿌리의 껍질
제비꽃(비올라 오도라타) : 뿌리와 말린 꽃
호두나무 : 잎
야생 꽃박하(오리가눔 불가레) ; 그러나 스위트 마조람(마조라나 호르텐시스나 오리가눔 마조라나)을 **제외한다(제7류)**.
선갈퀴(아스페룰라 오도라타) : 초
시나쑥(아르테미시아 시나) : 꽃
쓴쑥(아르테미시아 아브신티움) : 잎과 꽃
요힘바(코리난테 요힘베) : 나무 껍질

위 표의 식물학상 명칭(전부 수록된 것은 **아니다**)은 식물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수한 종류의 식물학명의 열거는 동일 과에 속하는 식물 중 다른 종류의 식물이 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호의 물품 중 국제기구에서 마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표시하였다.

12.12 - 로커스트콩(locust bean)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 식용

1212.29 -- 기타

- 기타

1212.91 -- 사탕무

1212.92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1212.93 -- 사탕수수

1212.94 -- 치커리(chicory) 뿌리

1212.99 -- 기타

(A)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예: 의료용 물품 · 화장품류 · 식용 · 사료용 · 비료).

이 호에는 해초류의 거친 가루[조분(粗粉)]와 그 밖의 조류의 거친 가루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한천과 카라기난(carrageenan)(**제1302호**)

(b) 죽은 단세포 조류(藻類)(**제2102호**)

(c)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

(d) **제3101호**나 **제3105호**의 비료

(B) 사탕무와 사탕수수

이 호에는 사탕무와 사탕수수를 분류한다(이 호에서 규정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는 즙을 짜고 난 후에 남은 사탕수수의 섬유질 부분인 버개스(bagasse)는 **제외한다**(**제2303호**).

(C) 로커스트콩(locust bean)

로커스트콩(또는 carob) : 지중해 지방 고유의 작은 상록수(*Ceratonia siliqua*)의 열매이다. 이들은 많은 씨가 들어 있는 갈색의 꼬투리로 되어 있으며 주로 증류용 물질이나 동물의 사료로 사용한다.

로커스트콩은 높은 비율의 당분을 함유하며 때로는 스위트 미트(sweet meat)로 식용으로 쓰인다.

이 호에는 배유(胚乳 : endosperm) · 씨눈(germ) · 원형의 씨와 가루 모양 씨눈을 분류하며, 가루 상태의 겉껍질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점액이나 시커너(thickener)와 같은 것으로서 **제1302호**에 분류하는 로커스트콩의 배유(胚乳)의 고운 가루는 **제외한다**.

(D)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이 그룹에는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직접이나 간접으로 식용에 사용하지만, 이 표에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복숭아[승도복숭아(nectarine)를 포함한다] · 살구 · 자두의 핵(核) (주로 아몬드 대용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은 기름 추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일 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분류한다[신선한 것 · 건조한 것 · 원형의 것 · 조각 상태(chopped)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커피 대용물로 사용하는 이 변종의 볶은 치커리뿌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제2101호)**. 그 밖의 볶지 않은 치커리뿌리는 **제0601호**에 분류한다.

또한 설탕절임의 조제에 사용하는 안젤리카(angelica)의 줄기와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안젤리카(angelica)도 이 호에 해당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금물에 일시 보존한다.

이 호에는 사탕수수[예: 사카라툼(*saccharatum*)]도 분류하는데, 이들은 일차적으로 시럽이나 당밀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조각(彫刻)용 과실의 핵(fruit stone)과 과실의 씨(fruit pip)(예: 대추야자씨)(**제1404호**)나 볶은 과실의 핵[일반적으로 커피 대용물로 분류하는 것(**제2101호**)]은 **제외한다**.

12.13 -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 것(예: 직접 압축하거나 전중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분류하며,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한다. 세척된 짚·표백된 짚이나 염색한 짚도 **제외한다(제1401호)**.

12.14 - 스워드(swede) · 멥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121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스워드(rutabaga : *Brassica napobrassica*) · 멥골드(mangold) · 사료용 순무(turnips) · 사료용 당근(백색이나 담황색)과 그 밖의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이들 뿌리채소류는 그들 중 일부 것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2)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의 양배추(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로서 신선한 것 · 건조한 것 · 원형의 것 · 절단한 것 · 저민 것 · 압축한 것. 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 · 사일로(silo)내에서 발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있어서 “유사한 사료용 식물(similar forage product)”에는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2308호)**.

또한 이 호의 사료용의 식물에는 펠릿(pellet) 모양의 것, 즉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0706호**의 당근(적황색의 것)
- (b) 곡물의 짚과 껍질(**제1213호**)
- (c)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특히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예: 비트(beet) · 당근의 상부와 옥수수(의 잎(**제2308호**))
- (d) 조제 동물사료[예: 가당(加糖)한 사료](**제2309호**)

제 13 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주:

1. 제1302호에는 특히 감초 추출물(extract)·제충국 추출물(extract)·홉(hop) 추출물(extract)·알로에 추출물(extract)과 아편이 포함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감초 추출물(extract)로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이나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1704호)

나. 맥아 추출물(extract)(제1901호)

다.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제2101호)

라.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extract)로서 알코올음료에 사용되는 것(제22류)

마. 제2914호나 제2938호의 장뇌·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그 밖의 물품

바.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줄기 농축물(제2939호)

사.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822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아. 유연용 추출물(extract)과 염색용 추출물(extract)(제3201호·제3203호)

자.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 앰설루트(absolute),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또는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제33류)

차.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제4001호)

13.01 -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 - 아라비아 검

1301.90 - 기타

(I) 락(lac)

락(lac)은 코치닐(cochineal)과 커미즈(kermes)와 동일과에 속하는 곤충류가 여러 종류의 열대수목에 분비하여 놓은 수지성(resinous) 물질이다.

상거래 관례상 특히 중요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스틱 락(stick lac)** : 일반적으로 락(lac)이 약간 두꺼운 층으로 작은 나무가지에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암적색을 띠며 색조의 변화가 많다.
- (B) **시드 락(seed lac)** : 나무 가지로부터 락(lac)을 떼어내서 잘게 부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세척함으로써 색소를 제거한다.
- (C) **셸락(shellac)** : 시트 모양의 락(sheet-lac)·플레이트 락(plate-lac)이나 슬래브 락(slab-lac)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용융하거나 여과함으로써 정제 검(gum)으로 얻어진다. 이것은 시트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으로서 호박색이나 불그스름한 색깔을 지닌다. 원반 모양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버튼 락(button lac)"으로 알려져 있다.

셸락(shellac)은 바니시의 조제·전기공업과 봉랍(sealing wax)의 제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 (D) **리퓨즈 락(또는 garnet lac)** : 셸락(shellac)을 조제할 때에 생기는 잔유물로부터 얻어진다.

또한 락(lac)은 탈색되거나 표백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타래 모양으로 꼬아진 것도 있다.

어떤 동양산 수목의 수액(sap)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얇은 막을 이루며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으로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일본래커(Japan lacquer)"·"중국래커(Chinese lacquer)" 등으로 알려진 것](제1302호).

(II) 천연 검·수지·검 수지와 올레오레진(oleoresin)

천연검(natural gum)·수지·검수지(gum resin)와 올레오레진(oleoresin)은 공기에 접촉하면 고형(固形)화되는 식물성 분비물이다. 그 명칭은 흔히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 물품들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 (A) **진정한 검(true gum)** :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다소 수용성이 있는 점성의 물질로서, 태우면 용해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 (B) **수지(resin)** : 물에 녹지 않으며, 약간 냄새가 나고 전도성이 약하다. 음성전하(-)를 지니고 있으며, 가열하면 부드러워지며 비교적 완전하게 용해되고 불을 붙이면 특이한 냄새와 연기가 섞인 불꽃을 내면서 탄다.
- (C) **검수지(gum-resin)** : 이는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gum)과 수지가 여러 가지의 비율로 혼합된 천연의 혼합물로서, 부분적으로 물에 녹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극적이고 독특한 냄새와 맛을 가지고 있다.

(D) **올레오레진(oleoresin)** : 주로 휘발성 물질과 수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분비물이다. **발삼(balsam)**은 안식향 화합물이나 계피향 화합물을 고함량으로 하는 특성을 갖는 올레오레진이다.

이들 물품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아라비아검(gum Arabic)(여러 가지의 아카시아로부터 얻으며 때로는 Nile gum · Aden gum · Senegal gum으로 불려진다) ; 트래거칸트검[gum tragacanth(*Astragalus*의 어떤 변종으로부터 얻어진다)] ; 바스라검(Basra gum) ; 아나카디움검[Anacadium(캐슈넛 나무의 검)] ; 인디안검 ; 벗나무 · 오얏나무 · 살구나무 · 복숭아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같은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 여러 가지 종의 수목으로부터 얻는 소위 토착검(indigenous gums)
- (2) 소나무(테레빈나무 포함) · 전나무나 그 밖의 침엽수의 신선한 액체 올레오레진[가공하지 않은 것(조상)이나 정제한 것]과 수목에 새겨놓은 상처에 흘러나와 건조된 것으로서 식물성 웨이스트(waste)가 함유된 침엽수의 수지(galipot 등)
- (3) 코팔(copal)(인도 · 브라질 · 콩고 등)(화석 코팔을 포함한다) ; 카우리 검 ; 담마(dammar) ; 매스틱(mastic) ; 엘레미(olemi) ; 산다랙(sandarac) ; 기린혈(dragon's blood)
- (4) 갬부즈(gamboge) ; 암모니아검(gum ammoniac) ; 애서페티더(asafoetida) ; 스캠머니(scam money) ; 유포비아(euphorbia) ; 갈버눔(galbanum) ; 오퍼퍼낙스(opoponax) ; 올리바눔(olibanum)이나 유향(incense) ; 몰약(myrrh) ; 아카로이드(acaroid) ; 구아이어쿰(guaiacum)
- (5) 안식향(gum benzoin) ; 소합향(styrax나 storax)(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 ; 톨루 발삼(tolu balsam) ; 페루비안 발삼(Peruvian balsam) ; 캐나다 발삼(Canada balsam) ; 코파이바발삼(copaiba balsam) ; 메카 발삼(Mecca balsam) ; 타프시아(thapsia)
- (6) 인도 삼식물에서 얻는 인도 삼수지(Cannabis resin)(가공하지 않았거나 정제한 것) (인도 삼수지는 마약이다-제29류 끝의 표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천연검 · 수지 · 검수지와 올레오레진(oleoresin)은 조상 · 세척 · 정제 · 표백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이라도 좋으나, 가압 하에서 물로 처리한 것이나 무기산(mineral acid)으로 처리된 것이나 열처리 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는데** ; 예를 들면 가압 하에서 물로 처리하여 수용성으로 만든 검과 검수지(**제1302호**) · 황산처리로 수용성을 부여해 준 검(**제3506호**)과 건성유에 용해되도록 열처리 된 수지(**제3806호**)와 같다.

또한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호박(amber)(**제2530호**)
- (b) 천연의 발삼(balsam)을 함유하는 의약품과 발삼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의 조제의약품(**제3003호**나 **제3004호**)
- (c) 락염료(lac-dye)[락(lac)으로부터 추출된 착색제](**제3203호**)
- (d) 레지노이드(resinoid)(이 호에 분류하는 물질로부터 추출된)와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제3301호**)
- (e) 톨유(tall oil)[일명 “액상 로진(liquid rosin)”으로 알려져 있다](**제3803호**)
- (f) 테레빈 유(spirits of turpentine)(**제3805호**)
- (g) 로진(rosin) · 수지산(resin acid) ·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 기름(rosin oil) · 수지산염(resinate) · 송지 핏치(rosin pitch) · 브루어 핏치(brewers' pitch)와 로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38류**)

13.02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 아편

1302.12 -- 감초로 만든 것

1302.13 -- 홉(hop)으로 만든 것

1302.14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1302.19 -- 기타

1302.20 -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 -- 한천

1302.32 --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9 -- 기타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

이들 수액과 추출물은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그 밖의 식물성 물질(예: 엽록소·탄닌산·매운맛 성분·탄수화물과 그 밖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essential oil)·레지노이드(resinoid)와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과 구별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편(opium)** : 양귀비(poppy)[과파베르 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의 설익은 꼬투리의 수액이 건조된 것으로서 줄기나 꼬투리로부터 추출되거나, 여기에 새겨놓은 상처에서 추출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것은 보통 여러 가지의 모양과 크기를 가진 것으로서 볼(balls) 모양이나 케이크(cake)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 중량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 줄기의 농축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이 류의 주 제1호바목 참조].

(2) **감초 추출물(liquorice)** : 콩과에 속하는 식물(*Glycyrrhiza glabra*)의 건조된 뿌리를 가압 하에서 열수로 추출한 다음 농축한다. 이것은 액체 상태·블럭 모양·케이크 모양·스틱 모양·슬라이스(slice) 모양이나 가루로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당(sucr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이나 당분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과자로 만든(즉, 조제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704호)**.

(3) **홉(hop)의 추출물**

(4) **제충국 추출물(pyrethrum extract)** : 주로 여러 가지의 제충국 종류(예: *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의 꽃을 노말 헥산(normal hexane)이나 석유에테르("petroleum ether")와 같은 유기용제로 추출함으로써 얻어진다.

- (5)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 뿌리의 추출물(derris · cubé · timbo · barbasco 등)
- (6) 인도 삼속의 식물의 추출물과 톱크추어(tincture)
인도 삼수지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정제한 것은 제외한다(제1301호).
-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삼차나 인삼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추출물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 (8) 알로에(aloe) : 동일한 명칭을 갖는 여러 가지의 식물(Liliaceae과)로부터 얻는 대단히 쓴 맛을 가지는 점성의 수액
- (9) 포도필럼(podophyllum) : 포도필럼 펠타툼(*Podophyllum peltatum*)의 건조된 근경으로부터 알코올로 추출한 수지성 물질
- (10) 큐라리(curare) : 스트리크노스(*Strychnos*)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식물의 잎과 나무 껍질로부터 추출한 수성 추출물
- (11) 쿠아시아 아마라(*quassia amara*) 추출물 : 남아메리카에서 성장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관목(*Simaroubaceae*과)의 목질로부터 얻는 추출물
쿠아신(Quassin)은 쿠아시아 아마라의 목질에서 나온 대단히 쓴 추출물로서 제2932호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일종이다.
- (12) 그 밖의 의약품 추출물. 예: 벨라돈나(belladonna) · 블랙얼더[black alder(alder buckthorn)] · 카스카라 사그라다(cascara sagrada) · 마늘(garlic) · 겐티안(gentian) · 할라파(jalap) · 기나(cinchona) · 대황근(rhubarb) · 사르서퍼릴라(sarsaparilla) · 타마린드(tamarind) · 벨러리안(valerian) · 파인버드(pine buds) · 코카(coca) · 콜로신드(colocynth) · 메일 편(male fern) · 윗치 하즐(witch hazel) · 헨베인(henbane) · 맥각(ergot of rye)
- (13) 만나(manna) : 서양물푸레나무(ash-tree)의 어떤 종류로부터 삼출 방법에 의하여 얻은 감미를 가진 수액의 고체 물질
- (14) 끈끈이(bird lime) : 겨우살이 열매(mistletoe berry)와 서양감탕나무(holly)로부터 추출된 녹색의 점성 물질
- (15) 카시아 펄프(cassia pulp)에서 얻어진 수성 추출물, 그러나 카시아 꼬투리와 카시아 펄프는 제외한다(제1211호).
- (16) 키노검(gum kino) : 유연용(tanning)과 의약품에 사용하는 어떤 열대수목의 점질 수액
- (17) 일본(또는 중국) 래커(lacquer)(천연 래커) : 극동지역에서 성장하는 라스(rhus : urushi)(예: *Rhus vernicifera*)로 알려진 어떤 종류의 관목(shrub)에 새겨놓은 상처에 삼출케 함으로써 얻은 수액의 일종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물품(쟁반 · 장농 등)의 도장용(coating)이나 장식용(decorating)으로 사용한다.
- (18) 포포주스(papaw juice) : 파파인 효소(papain enzyme)와 같이 정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건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응집된 라텍스(latex)의 소립자(globule)가 아직 존재해 있다]. 파파인(papain)은 제외한다(제3507호).
- (19) 콜라[cola(kola) 추출물] : 콜라너트(colanut)[여러 가지 콜라(Cola)속(예: *Cola nitida*)의 씨]에서 얻어지며 주로 어떤 음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 (20) 캐슈너트(cashew nut) 껍질추출물, 다만, 캐슈너트 껍질 용액 추출물의 중합체(polymer)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11호).

(21) 바닐라 올레오레진(vanilla oleoresin)(때로는 바닐라 수지나 바닐라 추출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다)

수액(sap)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일 수 있다. **“팅크추어”(tincture)**는 추출된 그대로 아직 알코올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추출물이다. ; 소위 **“유동추출물”(fluid extract)**은 예를 들면, 추출물이 알코올·글리세롤이나 광유(鑛油)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팅크추어(tinctures)와 유동추출물(fluid extracts)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예: 제충국 추출물은 예를 들면, 2%·20%나 25%의 표준 피레트린(pyrethrin)을 함유하는 상관레상의 규격품을 만들기 위하여 광유를 첨가함으로써 표준화될 수 있다]. **고형(固形) 추출물(solid extract)**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형 추출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추출물은 최초의 용매 추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특정의 화합물이나 화합물 군(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이나 정제과정(예: 크로마토그래피 정제)을 거치지 않는다.

추출물은 단일의 것이나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추출물은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 혼합 추출물(compound extract)은 단일 추출물을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혼합 추출물(알코올성의 팅크추어의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의 성분을 함유한다 ; 혼합 추출물에는 할라파(jalap)의 혼합 추출물·알로에(aloe)의 혼합 추출물·기나(cinchona)의 혼합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조제식료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들 물품이 예를 들어,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한외여과(限外濾過: ultrafiltration), 또는 최초 추출 후의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예: 액체-액체 추출)을 통해 고도로 정제(refined or purified)된 경우에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 중 국제기구에서 마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표시하였다.

이 호에서 **제외하는** 조제품은 다음과 같다.

- (i)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하는 **향미료를 가한 시럽(제2106호)**
- (ii)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이 호의 식물성 추출물에 유산(lactic acid)·주석산(tartaric acid)·구연산(citric acid)·인산(phosphoric acid)·방부제·발포제·과즙 등을 혼합하거나 때로는 정유(essential oil)를 혼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 같이 얻어진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제2106호**나 **제3302호**에 분류한다.
- (iii) **의약품 조제품**[어떤 것은 “팅크추어(tincture)”로 알려진 것도 있다] : 식물성 추출물과 그 밖의 물품과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예: 고추의 추출물·테레핀유·장뇌와 살리실산 메칠 혼합물이나 아편팅크추어·아니스유(anise oil)·장뇌나 안식향산의 혼합물로 된 조제품](**제3003호**나 **제3004호**).
- (iv) **살충제 제조용의 중간제품** : 피레트린(pyrethrin)의 함유량이 2% 미만으로 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광유(鑛油)를 첨가하여 희석하거나 효력증진제[synergist(예: piperonyl butoxide)]와 같은 다른 물질을 첨가한 제충국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다(**제3808호**).

이 호에는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혼합되거나 복합된(그 밖의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식물성 추출물은 **제외한다**. 이와 같은 혼합물이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제조된 이와 유사한 혼합 추출물은 **제3003호**나 **제3004호**에 분류한다. 또한 단일의 식물성 추출물(표준화되었거나 어떠한 용제에 용해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일정 투여량으로 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제30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와 올레오레진(oleoresin) 추출물을 **제외한다(제3301호)**. 정유(용제추출로 얻어지기도 하는)는 본질적으로 휘발성의 향기성 물질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추출물과 다르다. **레지노이드**는 건조된 천연의 비(非)셀룰러 식물이나 동물성 수지 재료의 유기 용제 추출이나 초임계(super-critical fluid) 유체(예: 가압 하에서의 이산화탄소가스) 추출에 의해 얻어진다는 점에서 이 호의 추출물과 구별된다. **올레오레진(oleoresin) 추출물**은 (1) 천연의 셀룰러 식물성 원재료(거의 항상 향신료나 방향성 식물)에서 유기용제 추출이나 초임계 유체(super-critical fluid) 추출에 의해 얻어진다는 점과 (2) 비휘발성의 향미소와 함께 휘발성의 향미소(향신료나 방향성 식물의 향기나 향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호의 추출물과 다르다.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열거된 다음의 식물성 생산품은 **제외한다**.

- (a) 천연검 · 검수지 · 수지 · 올레오레진(제1301호)
- (b)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제1901호)
- (c) 커피 · 차(茶) · 마테(maté)의 추출물(제2101호)
- (d)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로서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것(제22류)
- (e) 담배 추출물(tobacco extract)(제2403호)
- (f) 장뇌(camphor)(제2914호) · 글리시리진(glycyrrhizin)과 글리시리제이트(glycyrrizate)(제2938호)
- (g) 혈액형 분류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추출물(제3822호)
- (h) 유연 추출물(tanning extract)(제3201호)
- (ij) 염색용 추출물(dyeing extract)(제3203호)
- (k) 천연 고무 ·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올(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B) 펙틴질 · 펙틴산염(pectinates)과 펙트산염(pectates)

펙틴질(pectic substance)(일반적으로 “펙틴”으로 알려져 있다) : 다당류(polysaccharide)로서 기본구조는 폴리갈락투론산(polygalacturonic acid)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식물, 특히 과실과 채소의 세포에 존재하며 상업적으로는 사과 · 배 · 마르멜로(quince) · 감귤류의 과실 · 사탕무 등의 잔유물로부터 추출한다. 펙틴질은 주로 잼과 그 밖의 사탕절임 과실을 조제하는데 “경화제(setting agent)”로 사용한다. 이들은 액체나 가루로 된 것도 있으며 당류(자당 · 포도당 등)나 그 밖의 물품을 첨가함으로써 표준화(사용할 때 일정한 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은 때로는 구연산나트륨이나 그 밖의 완충용 염을 함유한다.

펙틴산염(pectinates)은 펙틴산(pectinic acids)의 염[부분적으로 메톡시화(methoxylated)된 폴리갈락투론산]이고 **펙트산염(pectates)**은 펙트산의 염[탈(脫) 메톡시화한 펙틴산]이다. 이들은 성질과 용도가 펙틴과 같다.

(C)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 : 찬 물에 팽창되고 뜨거운 물에는 녹으며, 균질한 아교질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맛이 없는 덩어리 모양이다. 그들은 젤라틴의 대용품으로서 주로 식품조제용·직물의 제조와 종이의 완성가공용·어떠한 액체의 정화용·세균배양과 의료용품과 화장품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그것들은 화학적 처리(예: 에스테르화, 에테르화, 붕사·산(酸)·알칼리에 의한 처리)에 의하여 변성될 수도 있다.

이들 물품은 당류[포도당·자당(蔗糖) 등]이나 그 밖의 물품(사용할 때 일정한 활성을 주기 위하여)의 첨가에 의해서 표준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한천(agar-agar)** : 주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어떤 해초로부터 추출되며 보통 건조된 섬유 모양·플레이크 모양·가루나 산(酸)처리에 의하여 얻는 아교질 모양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상관례상으로는 “젤로스”(gelose)나 일본산 식물성 젤라틴(이끼)이나 알가 스피노사(*Alga spinosa*)로도 불려진다.
- (2) **로커스트콩(*Ceratonia siliqua*)이나 구아의 씨(*Cyamopsis psoralioides*나 *Cyamopsis tetragonoloba*)의 배유(胚乳)의 고운 가루** : 이들 가루는 이들의 점질성을 안정화(점도 용해성 등)하기 위하여 약간의 화학처리가 가해진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 (3) **카라기난(carrageenan)** : 불가사리[carrageen(일명 진두발이나 pearl moss)]로부터 추출되며 일반적으로 섬유질의 실 모양·플레이크 모양이나 가루 모양이다. 이 호에서 또한 화학적 치환에 의하여 카라기난(carrageenan)으로부터 얻어진 점질물(예: “sodium carrageenate”)도 포함한다.
- (4) **시커너(thickener)** : 가압 하에서 물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된 수용성의 검(gum)이나 검 수지(gum-resin)로부터 얻어진다.
- (5) **타마린드 씨(*Tamarindus indica*)의 자엽(子葉)가루(*cotyledon flour*)** : 이것은 열이나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원래 모양이나 건조한 해초류(seaweed)와 그 밖의 조류(藻類 : algae)(일반적으로 제1212호)
- (b) 알긴산과 알긴산염(제3913호)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제11부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와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방직용 섬유재료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그 밖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
2. 제1401호에는 특히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하거나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쪼갠 버드나무 가지(osier)·갈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나무의 심(core), 등나무를 뽑아서 늘리거나 쪼갠 것이 포함되며, 칩우드(chipwood)는 제외한다(제4404호).
3. 제1404호에는 목모(木毛)(제4405호)·비·브러시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제외한다(제9603호).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주로 편조물(編組物)용, 브러시나 비의 제조용, 충전물에 사용하는 종류의 원료나 간단한 가공을 한 식물성 재료
- (2) 조각용·단추와 장신구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종자·껍질(殼)과 핵(核)
- (3)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

이 류에는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방직용 섬유재료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그 밖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제11부)**.

14.01 -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 - 대나무

1401.20 - 등나무

1401.90 - 기타

이 호에는 주로 매트(mat)·매트지(matting)·쟁반·모든 종류의 바구니[과실·채소·굴(oyster) 등을 포장하는 바구니를 포함한다]·뚜껑있는 광주리(hamper)·여행용 가방·가구(예: 의자와 책상)·모자 등의 제조를 위하여 결합하거나 편조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를 분류한다. 또한 이 같은 원재료는 브러시·우산 손잡이·지팡이·뉘싯대·관(pipe)의 축·조잡한 로프 등의 제조와 종이 펄프의 제조나 침대 속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대나무(bamboo)** : 풀의 특수한 종류로서, 어떤 지방과 특히 중국·일본·인도에서 생산된다. 대나무는 대단히 가볍고 윤이 나며, 보통 가운데가 빈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양쪽 마디 사이에 상호 교대로 홈이 있다. 이 호에는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길이로 절단한 것·끝을 둥글게 한 것·표백한 것·불연성(不燃性)으로 한 것·연마한 것이나 염색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 (2) **등나무(rattan)** : 이것은 보통 등나무(*Calamus*)속의 덩굴손의 줄기로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며, 직경 0.3cm~6cm이고 황색에서 갈색인 단단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원통형이다. ; 이는 희미하거나 윤택있는 표면을 가졌다. 이 호에는 등심(rattan core)과 단단한 외부 줄기를 포함하며 ; 심(core)이나 줄기(cane)나 등나무를 종으로 절단하여 얻은 긴 스트립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 (3) **갈대(reed)와 골풀(rush)** : 이 집합적인 명칭은 온대나 열대의 양 지역의 습지에서 생육되는 많은 초목식물에 적용한다. **갈대**는 보통 똑바르고 가운데가 빈 단단한 줄기로서, 잎의 위치를 만드는 비교적 규칙적인 간격의 마디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종류에는 물골풀(*Scirpus lacustris*)·보통의 갈대와 야생갈대(*Arundo donax*와 *Phragmites communis*)·여러 가지 싸이퍼러스(*Cyperus*)속(예: *Cyperus tegetiformis*, the Chinese mat grass)과 전커스(*Juncus*)속(예: *Juncus effusus*, the Japanese mat rush)을 포함한다.
- (4) **버드나무 가지(osier)**(백색·황색·녹색이나 적색) : 이는 특정의 버드나무(*Salix*)의 길고 유연한 어린 가지이다.
- (5) **라피아(raffia)** : 라피아(*Raphia*)속의 특정의 팜나무의 잎에서 얻는 섬유질의 작은 조각에 대한 상거래 관례상의 명칭이며, 중요한 것으로서는 주로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성장되는 라피아 루피아(*Raphia ruffia*)는 조물재료와 원예용 결속재로 사용한다. 방적하지 않은 라피아 직물은 **제외한다(제4601호)**. 이 호에는 라피아와 동일 목적이거나, 모자 제조용에 사용하는 그 밖의 엽(leaves)과 풀(예: 파나마와 라타니아의 것들)을 포함한다.
- (6) **곡물의 짚(cereal straw)** : 이는 이삭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세척·표백하거나 염색한 것이다(아래 참조).

(7) 여러 종의 피나무(*Tilia species*)의 내피(bast) : 이 속껍질의 섬유는 매우 강하며, 로프 제조 · 포장용포 · 조(組)매트지 · 식물의 결속재료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바오밥 나무 껍질 · 특정 종류의 버드나무와 포플러의 나무 껍질을 포함하며 이들은 유사한 용도를 갖는다.

조제하지 않은 상태인 곡물의 짚이 **제외(제1213호)되는** 것과 **별도로**, 이 호에 해당되는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의 재료는 세척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미가공한 것 · 스트립 모양으로 쪼갠 것 · 껍질을 벗긴 것 · 광택을 낸 것 · 표백한 것 · 염색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 · 염색한 것 · 바니시한 것 · 래커 칠한 것 · 불연성(不燃性)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끝을 둥글게 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음료수 빨대 제조용 짚 · 낚싯대 제조용의 줄기 · 염색용 대나무 등)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과 포장 · 저장 ·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가볍게 만든 여러 가지로 된 묶음과 다발(hank)이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편조물(編組物)의 대용으로서 그 상태로 사용에 적합하도록 엮어서 조립된 것은 **제4601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칩우드(chipwood)(**제4404호**)

(b) 앞에서 설명한 식물성 재료를 방적용으로 압연 · 파쇄 · 빗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제5303호나 제5305호**)

[14.02]

[14.03]

14.04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 - 면(綿) 린터(linter)

1404.90 - 기타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면(綿) 린터(cotton linter)

특정 종류의 면화나무 종자는 앞 호에 속하는 면섬유를 조면(縲綿 : ginning)에 의하여 분리시킨 후에도 아직 대단히 가늘고 짧은 면섬유(보통 길이 5mm 미만 것)로 덮여 있다. 이 섬유를 면(綿) 린터라고 부른다.

면(綿) 린터는 방적하기에는 너무 짧다. 이 린터는 셀룰로오스를 대단히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무연화약(smokeless powder)과 인조섬유 제조(예: 레이온)나 셀룰로오스 플라스틱의 이상적인 원료이다. 면(綿) 린터는 또한 특정 종류의 종이 제조·여과블록(filter block)의 제조와 고무공업의 충전재로도 때때로 사용한다.

면(綿) 린터는 용도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또한 원료상태·세정·표백·염색·탈지(脫脂)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은 벌크 상태로 제시하거나 시트(sheet)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강하게 압착된 것일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의료용 워딩(wadding)이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이나 모양으로 된 워딩(제3005호)
- (b) 그 밖의 워딩(제5601호)

(B) 주로 염색용(dyeing)이나 유연용(tanning)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원재료

이러한 식물성 생산품은 주로 염색이나 유연에 직접 사용하거나 이들 추출물(extract)의 조제에 사용한다. 이들 재료는 처리되지 않은 것·세척한 것·건조한 것·잘게 부순 것(분쇄)이나 가루로 된 경우도 있다(압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의 물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목질재료(wood)** : 슈마크(sumach)·푸스틱(fustic)[일명 “영 푸스틱(young fustic)”을 포함한다]·로그우드(logwood)·퀘브라초(quebracho)·브라질우드(Pernambuco wood와 sappan wood를 포함한다)·밤나무·자단(red sandalwood)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목질재료는 칩 모양·대핏밥·잘게 부순 것·가루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 형태의 이런 목재는 제외한다(제44류).

- (2) **나무 껍질(bark)** : 여러 종류의 참나무류[흑참나무(querцитron)와 코크참나무(cok-oak)의 속 껍질을 포함한다]·밤나무·실버버치·슈마크·영 푸스틱·왓틀·미모사·망그로브·헴록과 버드나무의 나무 껍질

- (3) **근류(roots)와 이와 유사한 것** : 매더(madder) · 커네이그리(canaigre) · 베버리스
별가리스(*Berberis vulgaris*)와 알카넬(alkanet)
- (4) **과실·베리와 종자** : 알가로빌라(Algarobilla)의 꼬투리 · 발로니아(vallonia) · 미로발란
(myrobalan) · 디비디비(dividivi)[리비디비(libidibi)] · 벅쏸베리(페르시아인 베리 · 터키종자 ·
노란베리 등으로 알려진 것) · 안나토(annatto)의 종자와 펄프 · 호두의 바깥 껍질과 아몬드
의 바깥 껍질
- (5) **오배자(gall nuts)** : 알레포 오배자(Aleppo gall) · 중국 오배자(Chinese gall) · 헝
가리안 오배자(Hungarian gall) · 파인 오배자(pine gall) 등

오배자(gall nut)는 시니프스(*Cynips*)속과 같은 특성의 곤충이 여러 가지의 참나무나
그 밖의 수목의 잎이나 작은 가지에 구멍을 뚫었을 때 생기는 “혹”같은 것이다. 이들은
탄닌산과 몰식자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염색이나 필기용 잉크의 조제에 사용한다.

- (6) **줄기·잎과 꽃** : 대청(woad) · 수마크(sumach) · “영 프스틱” · 감탕나무 · 미틀 ·
해바라기 · 헨나 · 레시다나 인디고 식물의 줄기와 잎 ; 랜티스커스(mastic)의 잎 ;
잇꽃(bastard saffron)과 염색 그린우드(*Genista tinctoria* ; woadwaxen)의 꽃

이 호에는 사프론(saffron)의 계두(stigma)와 화계(style)를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0910호).

- (7) **지의(地衣)(lichen)** : 오칠(orchil)[또는 아칠(archil)] · 커드베어(cudbear)와 리트머스
(litmus)로 알려진 염료가 채취되는 지의류(*Rocella tinctoria*와 *fuciformis* · *Lichen*
*tartareus*와 *Lichen parellus* · pustulous lichen이나 *Umbilicaria pustulata*)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물로 추출한 오배자(gall-nut) 탄닌(tannin)을 포함하는 식물성 유연 추출물과 탄닌(탄닌산)(제3201호)
(b) 염료를 채취하는 여러 가지 목재의 추출물과 그 밖의 식물성 염료용 추출물(제3203호)

(C)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자·껍질과 너트

이러한 물품은 주로 단추·구슬·목주와 그 밖의 소형 장신구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상아야자(corozo)** :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성장되는 여러 종류의 팜나무 종자[“너트
(nut)”]이며 상아(ivory)의 조직·경도·색조와 유사하므로 일명 “식물상아(vegetable
ivory)”라 칭한다.
- (2) **도움 팜(doum palm)의 종자[“너트(nut)"]**. 주로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Eritrea
· Somaliland · the Sudan 등)에서 생육된다.
- (3) **그 밖의 팜나무의 유사한 너트(예: Palmyra와 Tahiti nut)**
- (4) **갈대의 종류 칸나 인디카(*Canna indica* : *Indian shot*)의 종자; 아브러스 프리카
토리우스(*Abrus precatorius* : 또한 bead-tree라고도 부른다)의 종자; 대추야자의
핵; 피아사바 팜(piassava palm)의 너트**
- (5) **코코넛의 껍데기(殼)**

위의 물품은 원래 모양의 것이나[상아야자(corozo)와 도움너트(doum nut)의 경우에
흔히 있다] 절편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보통 제9602호나 제9606호).

(D)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와 거머리말(eel-grass)(충상으로 하였는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주로 가구·쿠션·매트리스·베개·마구류·구멍구 등의 충전물로써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를 포함하며, 보조적인 용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들 재료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충전물로써 사용하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과 다른 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 예: 목모(木毛: wood wool)(제4405호)·코르크 울(cork wool)(제4501호)·코코넛 섬유[혹은 코이어(coir)](제5305호)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waste)(제52류·제53류) 등이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케이폭(kapok)** : 봄바카시예(*Bombacaceae*)과의 여러 나무의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담황색이나 갈색을 띠는 솜 모양의 섬유의 상품명으로서 이 섬유는 종류에 따라 그 길이가 15~30mm이며, 신축성이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중량은 가벼우나 부서지기 쉽다.
- (2) **그 밖의 식물성 솜털**[때로는 식물성 견(vegetable silk)으로 알려진 것] : 어떤 종류의 열대식물[예: 아스클레피아스(*Asclepias*)]의 종자의 단세포 조직의 헤어(hair)로 형성된 것이다.
- (3) **식물성 헤어(vegetable hair)로 알려진 생산품[알젤리안 섬유(크린 베지탈(*crin vegetal*))를 포함한다]** : 특정 종류의 난장이 팜나무[특히 샤마에로프스 후밀리스(*Chamaerops humilis*)]의 엽(leaf)에서 얻는다.
- (4) **거머리말**(예: *Zostera marina*) : 이는 일종의 해양식물로서 형태는 헤어나 풀(grass)과 유사하다.
- (5) **천연적으로 곱슬곱슬한 물품(*foin frisé*)** : 이는 카렉스(*Carex*)속의 특정 갈대의 엽(leaf)에서 얻는다.

이 호에는 이들 재료가 가공하지 않았거나 세척·표백·염색·카드(card)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돈된 것을 포함하며(방직용은 제외한다), 이들이 타래 상태로 제시될 때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종류의 식물재료를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종이 등의 지지물 위에 충상으로 한 것이나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종이 등의 시트(sheet) 사이에 고정시켰거나 단순히 봉한 것도 포함한다.

(E) 비나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와 이스틸리(istle)]. 타래나 다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보조적인 용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주로 비와 브러시 등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식물성 재료나 주로 비와 브러시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식물성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세로로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갈대와 골풀(제1401호)·알파(alfa)·에스파르토 풀(esparto grass)과 금작화의 줄기(직물용으로 조제된 것으로 한정한다)[제5303호(브room(broom))이나 제5305호(알파와 에스파르토폴)]와 코코넛 섬유[또는 코이어(coir)](제5305호)는 **제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히 다음과 같다.

- (1) **씨 껍질을 제거한 벼·수수(*Sorghum vulgare var. technicum*)·특정의 밀리트의 원추꽃차례(panicle)**
- (2) **피아사바(piassava)** : 이는 특정 열대성의 팜나무의 잎에서 얻은 섬유이다. 가장 잘 알려진 변종은 브라질 피아사바와 아프리카 피아사바가 있다.
- (3) **카우치그래스(couch-grass)의 뿌리** : 앤드로포곤(*Andropogon*)속의 벼과의 식물로서 건조한 모래토질에서 자란다. 때때로 “브러시그래스(brush-grass)”로 알려진 이 식물은 유럽 특히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잡초이다. 이 카우치그래스(couch-grass) 뿌리는 정유(essential oil)를 가진 베티버(vetiver)의 뿌리[커스커스그래스나 인도 카우치그래스(couch-grass)]와 치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의약품인 카우치그래스(제1211호)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 (4) 에피캄페스(*Epicampes*)속의 뿌리와 같은 중앙 아메리카의 **특정 종류의 벼과 식물의 뿌리**[예: 금작화뿌리(broomroot)나 자카톤(zacaton)]
- (5) **아렌가 새커리피라(*Arenga saccharifera*)나 아렌가 핀나타(*Arenga pinnata*)에서 얻는 사탕야자 섬유(Gomuti fiber)**
- (6) **이스틀리(istle or ixtle)(Tampico·Tampico-fibre·Mexican fibre)** : 섬유로 구성되었으며, 단엽(短葉)의 멕시코 용설난속의 식물에서 얻는 짧고 강한 섬유를 포함한다.

모든 이 같은 재료는 절단한 것·표백한 것·염색한 것·빗질한 것(방직용의 것은 **제외한다**)이나 다발이나 타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묶었거나 술(tuft) 모양으로 정돈된 섬유로서 비나 브러시(brush)로 사용할 때 분리되지 않고 바로 결합할 수 있는 것(또는 그렇게 바로 결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공만이 요구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한 것은 제9603호에 분류한다(제96류의 주 제3호 참조).

(F)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

이들 물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에스파르토(esparto)** : 이는 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 생육되는 에스파르토펙[스티파 테나시씨마(*Stipa tenacissima*)]과 리굼 스파르툼(*Lygeum spartum*)풀에서 얻어진다. 주용도는 종이 펄프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로프와 망·양탄자·매트지·바구니와 신발 등의 조물제조와 의자와 매트리스의 충전물에 사용한다.

이는 줄기나 잎의 형태의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표백이나 염색된 것이 이 호에 분류되고 ; 직물용 섬유로서 롤로 한 것(rolled)·부순 것이나 빗질한 것은 **제외한다** (제5305호).

- (2) **알파(alfa)**(방직용 섬유직물용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
- (3) **금작화(broom)의 가공하지 않은 줄기(raw stalk)** : 콩과식물(leguminous plant)의 섬유로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에서 사용된다. 코움(comb)한 금작화 섬유나 토우(tow)는 **제외한다**(제5303호).

- (4) **수세미(loofah)** : 이는 식물성 스펀지로 알려져 있으며 표주박종(*Luffa cylindrica*)의 세포 모양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성 스펀지는 **제외한다(제0511호)**.
- (5) **상아야자(corozo) 가루** · 도움팜 “너트”(doum palm “nuts”)의 가루 · 코코넛의 껍데기의 가루 ·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가루
- (6) **지의류(地衣類)(lichens)**[그러나 염료용(항목(A)(7) 참조) · 의약용 · 장식용의 것이 아닌 것] : 한천 · 카라기난(carrageenan)과 식물성 재료에서 추출한 그 밖의 천연의 점액물질과 시커너(thickener)는 **제외한다(제1302호)**. **제1212호**의 헤초류 · 조류와 죽은 단세포조류(unicellular algae)(**제2102호**)도 **제외한다**.
- (7) **티즐의 구근(teazle-head)** : 식물의 완성가공에 사용하도록 조제된 것은 포함되나,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일본한지(통칭)** : 이는 극동지방의 고유한 특정 수목의 수심을 얇게 베어 제조한다. 이는 조화(造花)제조용 · 회화용 등에 사용한다. 한지의 박판은 표면을 광택처리했는지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9) **베텔나무잎(betel leaf)** : 신선하고 녹색의 넝쿨(*Piper betle L.*) 잎으로 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식사 후 기분을 상쾌하게 하거나 소화효과를 얻기 위하여 씹는 것이다.
- (10) **킬라이어 나무 껍질(quillaia bark)(soap 나무 껍질이나 panama 나무 껍질)(*Quillaia saponaria*)**
- (11) **새핀더스(sapindus) 베리나 종자(soap베리)(*Sapindus mukorossi* · *S. trifoliatum* · *S. saponaria* · *S. marginatus* · *S. drummondii*)**
- 이 호에 해당하는 식물성 재료를 방직용 섬유직물 · 종이 등의 지지물 위에 층상으로 한 것과 방직용 섬유직물 · 종이 등의 사이에 넣어 첩하거나 단순히 봉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제 3 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제 15 류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왁스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0209호의 돼지나 가금(家禽)의 비계
 - 나.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1804호)
 - 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통상 제21류)
 - 라. 수지박(粕)(제2301호)이나 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의 박(粕)류
 - 마. 지방산 · 조제 왁스 · 의약품 · 페인트 · 바니시(varnish) · 비누 · 조제향료 · 화장품 · 화장용품 · 황산화유나 그 밖의 제6부의 물품
 -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기름은 제외한다(제1510호).
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지방이나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은 제외하며, 이들은 변성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4. 소프 스톡(soap-stock) · 기름의 잔재 · 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 · 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 · 울그리스(wool grease) 잔유물은 제1522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1509.30호에서 버진 올리브유는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가 100 그램 당 2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버진 올리브유와 구분할 수 있다.
2.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란 에루크산(eruc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

총설

(A)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 · 특정 방법으로 정제한 것 · 처리한 것(예: 끓인 것 · 황화한 것 · 수소첨가한 것)
- (2) 지방과 기름에서 제조한 특정의 물품, 특히 그의 분해 생산물(예: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
- (3) 조제한 식용 지방과 기름(예: 마가린)

(4) 동물성·식물성 왁스

(5)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그러나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제0209호**의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b)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지방과 기름(**제0405호**) ; **제0405호**의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c) 코코아 버터(지방과 기름)(**제1804호**)

(d) 수지 박(糝 : greave)(**제2301호**) ; 오일 케이크·올리브 과육의 잔재물·그 밖의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추출 후에 남은 유지박(粕)(드레그는 제외한다)(**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e) **제6부**의 지방산·지방과 기름의 정제시 생긴 에시드 유·지방성 알코올·글리세롤(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 제외한다)·조제 왁스(prepared wax)·의약품·페인트·바니시·비누·조제향료·화장품이나 화장용품·황산화유와 그 밖의 물품

(f)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향유고래 기름(sperm oil)과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산(팔미틴산·스테아린산과 올레산)과 글리세롤 에스테르이다.

이는 고체나 액체이나, 물보다 가볍다. 공기 중에 장기간 방치하면 가수분해와 산화의 결과로 산패한다. 가열하면 분해하여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발산한다. 물에는 녹지 않으나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사염화탄소·벤젠 등에는 완전히 용해한다. 피마자유는 알코올에 용해하나 그 밖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은 알코올에 약간 용해한다. 이들은 종이에 묻으면 기름기 있는 얼룩이 오래도록 남는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을 형성하고 있는 에스테르는 과열증기·물은 산(酸)·효소·촉매의 작용으로 분해(비누화)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생기며, 알칼리의 작용으로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알칼리 염류(비누)가 생긴다.

제1504호와 제1506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들 호에서 규정한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도 포함하나, 이들이 이 표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예: 고래왁스(**제1521호**)]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분획화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압착·침전·동결처리와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b) 용제분획화

(c)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분획화는 지방이나 기름의 화학적 구조상의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제3부
제15류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단순히 변성만을 한 지방이나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이라는 표현은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을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유(魚油)·페놀·석유·터펜티유·톨루엔·메틸살리실레이트[동록유(冬綠油)]·로즈메리유와 같은 변성제를 첨가한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을 말한다. 이러한 물질은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을 예를 들면, 역한 냄새가 나는 것, 신맛이 나는 것, 자극성이 있는 것, 쓴맛이 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량(보통 1% 이하)으로 첨가한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는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의 변성한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8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주 제1호의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그들의 분획물은 식료품 공업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 류에 분류한다(예: 비누·양초·윤활제·바니시나 페인트의 제조).

동물성·식물성 왁스는 주로 특정 종류의 고급 지방산[팔미트(palmitic)산·세로트(cerotic)산·미리스트(myristic)산]과 글리세롤 이외의 특정 종류의 알코올(세틸알코올 등)로 된 에스테르이며 이는 지방성의 산(酸)과 유리(遊離)상태의 알코올을 특정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거나 탄화수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왁스는 가수분해하여도 글리세롤을 생성하지 않고 가열하여도 지방에서와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산패하지도 않는다. 왁스는 일반적으로 지방보다 단단하다.

- (B)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비휘발성의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식물의 특정 기관(예: 종자와 과실)의 세포에서 발견되며, 이들은 압착이나 용제(solvent)에 의하여 추출한다.

이들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은 불휘발성 유지 - 즉, 분해 없이는 쉽게 증류되지 않고 휘발되지 않으며, 과열증기(이것은 식물성 지방과 기름을 분해하여 비누화한다)에 잘 버티지 못하는 지방과 기름이다.

예를 들면, 호호바 오일(jojoba oil)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글리세라이드(glyceride)의 혼합물이다. 실온(室溫)에서 고체 상태인 팔미틴 글리세라이드와 스테아린 글리세라이드가 고체유에서 우세를 점하는데 비하여 액체유는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글리세라이드(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등의 글리세라이드)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아라키돈산과 리놀레산과 같은 다불포화(多不飽和) 지방산으로 주로 이루어진 글리세라이드의 혼합물이다.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

기름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예를 들면, “기름의 침전물(foots)와 잔재(dregs)”와 소프스톡(soap-stock)]은 **제1522호**에 해당한다. 정제로부터 생기는 에시드유(acid oil)는 **제3823호**에 해당되며, 이는 조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소프스톡(soap-stock)을 무기산으로 분해하여 만든다.

제3부 제15류

이들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주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에서 얻어지나 또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지기도 한다[예: 올리브유, 제1212호의 복숭아·살구·자두의 핵에서 얻어진 기름, 제0802호의 아몬드·호두·잣·피스타치오 등에서 얻은 기름, 곡물의 씨눈(germ)에서 얻은 기름]. 제1515호에 분류하는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은 채유(採油)에 적합한 미생물로부터 지방질(lipid)을 추출하여 얻는다.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은 단세포기름(SCO : single cell oil)이라고도 부른다.

이들 호에는 식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혼합물이나 조제품,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은 **포함하지 않는다**[그들은 다른 호(예: **제3003호, 제3004호,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제3403호**)에 분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나 제1518호**에 분류한다].

15.01 -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 라드(lard)

1501.2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1501.90 - 기타

이 호의 지방은 용출·압착이나 용제추출 공정 등에 의해 얻어질 수도 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공정은 습식용출(증기나 저온)과 건식용출이다. 건식용출공정에서는 일정한 양(量)의 지방을 고온처리로 유출시키고 나머지 양(量)의 지방은 압착하여 유출된 지방에 첨가시킨다. 어떤 경우에는 잔유물에 함유되어 있는 나머지 지방을 용제로 추출하여 얻기도 한다.

위의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라드(lard)** : 돼지의 지방조직에서 얻는 부드러운 크림같은 하얀 고체 모양이나 반고체 모양의 식용 기름이다. 채택되는 생산방법과 지방조직에 따라 여러 가지 라드가 생산된다. 예를 들면, 최고 양질의 식용 지방은 일반적으로 돼지 복부 안쪽의 지방을 건식 용출하여 얻어진다. 대부분의 라드는 냄새를 제거시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산화방지제(antioxidant)가 첨가되기도 한다.

월계수의 마른잎(향미료)이나 그 밖의 향신료를 함유(라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정도의 소량만을 첨가)하고 있는 라드는 이 호에 분류하지만 라드를 함유하고 있는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은 **제외한다(제1517호)**.

- **그 밖의 돼지의 지방**[골지방(bone fat)과 웨이스트에서 얻은 지방과 그 밖의 비식용 용도(예: 식용 이외의 제조용과 사료용)의 지방을 포함한다]

- **가금(家禽)의 지방**[골지방(bone fat)과 웨이스트(waste)에서 얻은 지방을 포함한다]

신선한 뼈에서 추출한 **골지방(bone fat)**은 탈로우(tallow)와 같은 밀도와 냄새를 가지는 희거나 노란색의 지방이지만, 상한 뼈에서 추출한 것은 고약한 냄새를 가지는 흐늘흐늘한 알갱이 모양이며, 칙칙한 노란색이나 갈색의 것이다. 그것은 비누·양초 제조와 윤활유 등에 사용한다.

웨이스트(waste)로부터 얻은 지방에는 도체(carcass)지방, 그 밖의 동물 웨이스트(waste)나 잔재물[혀 페어링(parings)·위·배어낸 부스러기 등]에서 얻은 지방이나 배어낸 부스러기나 가죽 세척에서 얻어진 그리스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검은 색을 띠고 고약한 냄새를 가지며, 예를 들면, 유리(遊離)지방산(올레산·팔미트산 등)이나 콜레스테롤과 불순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 호의 라드(lard)나 그 밖의 지방보다 녹는점(melting point)이 낮다. 이들은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이 같은 기름은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정제한 것이 있으며, 정제한 것은 중화·산성 백토(Fuller's earth) 처리·과열증기 주입·여과 등으로 얻은 것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식품의 조제, 연고나 비누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0209호**의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poultry)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
- (b) 라드 스테아린(lard stearin)과 라드유(**제1503호**)
- (c) 이 호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동물에서 얻은 지방(**제1502호·제1504호나 제1506호**)
- (d) **제1506호**의 골유(bone oil)
- (e) 이미테이션 라드(imitation lard)(**제1517호**)

15.02 - 소·면양·염소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 텔로우(tallow)

1502.90 - 기타

이 호에는 소·면양·염소의 내장과 근육을 둘러싼 지방을 분류하며, 소에서 얻는 지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지방은 미가공(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이나 용출한 상태(텔로우)인 것도 있다. 채택되는 용출가공공정은 제1501호의 지방을 얻는데 사용하는 가공공정과 동일하다. 이 호에는 또한 압착하거나 용매로 추출하여 얻은 지방도 포함한다.

“프리미어 저스(*Premier jus*)(oleo stock)”는 식용 텔로우(tallow) 중에서 최상급이며 고체로서 백색이나 황색의 물질이며 최근에 조제된 것이라면 냄새가 없으나 공기에 방치하면 특징 있는 산패한 냄새를 발생한다.

텔로우(tallow)는 거의 전적으로 올레(oleic)산, 스테아르(stearic)산과 팔미트(palmitic)산의 글리세라이드(glyceride)로 구성되어 있다.

텔로우는 식용 지방 제조나 윤활유의 조제·비누 제조와 양초 제조·가죽의 완성가공제의 제조·동물사료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소·면양이나 염소의 웨이스트(waste)에서 얻어진 지방과 골지방(bone fat)도 포함한다. 제1501호에 상응하는 지방에 대한 설명은 또한 이 호의 그러한 지방에도 적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올레오유(oleo-oil)와 텔로우 유(tallow oil)(**제 1503호**)

(b) 말(馬)에서 얻어진 지방(**제 1506호**)

(c) 이 호에 규정한 것 이외의 동물의 웨이스트(waste)에서 얻어진 지방과 골지방(bone fat)(**제 1501호·제 1504호나 제 1506호**)

(d) 동물을 원천으로 한 기름[예: **제 1506호**의 우각유(neat's foot oil)와 골유(bone oil)]

(e) “식물성 텔로우(vegetable tallow)”로 알려진 특정 식물성 지방 : 예를 들면, “중국 식물성 텔로우(Chinese vegetable tallow)”(stillingia fat)와 보르네오 텔로우(**제 1515호**)

15.03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이 호에는 라드(lard)를 압착하여 얻은 물품[즉, 라드스테아린(lard-stearin), 라드유(lard-oil)]이나 텔로우(tallow)를 압착하여 얻은 물품[즉, 올레오유(oleo-oil), 텔로우유(tallow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을 분류한다. 이들 공정에 있어서는 라드(lard)나 텔로우를 가열탱크에 3일 부터 4일까지 넣어 두는데 이 동안 라드스테아린(lard-stearin)이나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결정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결과로 생긴 알갱이 덩어리를 압착하여 스테아린으로부터 기름을 분리시킨다. 이러한 압착은 단백질과 연결조직 등과 같은 동물의 그 밖의 물질로부터 나머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에서 행하는 건식용출 공정의 압착과는 다르다. 이 호의 물품 등은 그 밖의 분류법에 의해 얻어지기도 한다.

라드 스테아린(lard stearin) : 라드나 그 밖의 돼지의 비계를 용출하여 얻은 지방을 압착한 후 잔류한 백색의 고체 형태의 지방이다. 이 호에는 식용과 비식용의 양자를 분류하며 식용 라드 스테아린은 때때로 좀 더 단단한 점조도를 주기 위하여 연성 라드(soft lard)를 혼합한다(제1517호). 비식용 라드 스테아린은 윤활제나 글리세롤·올레인이나 스테아린의 원료로 사용한다.

라드유(lard oil) : 라드(lard)나 그 밖의 돼지의 비계를 용출하여 얻은 지방을 냉간 압착하여 얻은 물품이다. 이는 황색의 액체로 미약한 기름진 냄새와 기본 좋은 맛이 있다. 이는 특정의 공업공정(양모가공·비누제조 등)이나 윤활제, 때로는 식용에 사용한다.

올레오유(oleo-oil)(식용) : 백색이나 황색의 부드러운 점성의 고체 형태 지방으로 텔로우의 미약한 냄새와 유쾌한 향미를 가졌다. 이는 결정성이지만 압연이나 유연의 공정을 거쳐 알갱이 모양으로 될 수 있다. 주로 올레산의 글리세라이드[트리올레인(triolein)]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는 주로 마가린·이미테이션 라드(imitation lard)와 같은 식료품과 윤활유의 제조에 사용한다.

텔로우유(tallow oil)(비식용 올레오유) : 황색의 액체로 텔로우의 냄새가 있으며 공기에 방치하면 대단히 쉽게 산패한 냄새가 나게 된다. 용도는 비누 제조와 광물성 기름(mineral oil)을 혼합하여 윤활제로 사용한다.

올레오유나 텔로우유를 추출한 후 남은 단단한 부분은 주로 스테아린산과 팔미트산의 글리세라이드(트리스테아린과 트리팔미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이나 **텔로우스테아린(tallow stearin)**으로 알려진 것은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케이크 모양이나 태블릿(tablet) 모양이다. 이것은 백색으로서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

이 호에는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제1516호·제1517호나 제1518호).

15.04 -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1504.20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1504.3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어류[대구·넙치·큰칭어·칭어·정어리·멸치·밴댕이(pilchard) 등]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고래·돌고래·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 이들은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몸체·간(liver)이나 그들의 웨이스트(waste)에서 추출되며 보통 어류 특유의 냄새와 불쾌한 맛이 있으며 색은 황색에서 적갈색으로 다양하다.

대구의 간(liver)·넙치의 간과 그 밖의 어류의 간 : 다량의 비타민과 그 밖의 유기 물질을 함유하는 기름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로 의약품에 사용한다. 이 같은 기름은 조사(照射 : irradiation)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타민의 함량을 증가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 치료의 목적으로 유화시킨 것이나 그 밖의 첨가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제30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냉각한 어유를 압착하거나 기울여 따르는(decanting)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고체 상태의 물품인 “어류 스테아린(fish stearin)”을 포함한다. 이것은 어류 냄새를 가진 노란색이나 갈색의 것이며, 데그라스(degras)·윤활유와 저급비누의 조제에 사용한다.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유도하여 얻은 정제한 지방과 기름은 이 호에 분류하나 전부나 일부에 수소첨가(hydrogenated)한 것·인터에스테르화(inter-esterified)한 것·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한 것·엘라이딘화한(elaidinised)한 것은 **제외한다(제1516호)**.

15.05 -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울그리스(wool grease) : 불쾌한 냄새를 가진 점착성의 지방이며 양모를 세정하거나 천(cloth)을 축융한 비누물에서 추출된 것이다. 휘발성 용제(이황화탄소 등)로 기름기 많은 양모(greasy wool)에서 추출한 것도 있다. 울그리스는 글리세롤에스테르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화학적으로는 지방(fat)보다는 왁스(wax)로 취급된다. 이는 윤활유의 제조나 그 밖의 공업용에도 사용되지만 주로 라놀린(이의 정제물품)이나 울그리스 올레인(wool grease olein)과 울그리스 스테아린(wool grease stearin)의 추출용으로 사용된다.

라놀린(lanolin) : 울그리스를 정제하여 얻으며 연고와 같은 점조도를 가지고 있다. 색조는 정제도에 따라 황백색에서 갈색까지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약간 변질되어 특징 있는 약한 냄새를 나타낸다. 라놀린은 끓는 주정(酒精 : spirit)에는 잘 용해되며, 물에는 녹지 않지만 다량의 물을 흡수하여 수화 라놀린(hydrated lanolin)으로 알려진 기름기 있는 유화물(unctuous emulsion)로 변한다.

무수 라놀린(anhydrous lanolin)은 윤활제의 조제 · 유화성 기름이나 완성가공제로 사용하며, 수화 라놀린(hydrated lanolin)이나 유화 라놀린(emulsified lanolin)은 주로 연고와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한다.

약간 변성한 라놀린 중 라놀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울 알코올(wool alcohol)(콜레스테롤 · 아이소콜레스테롤과 그 밖의 고급 알코올의 혼합물로 라놀린 알코올이라고 불리어진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알코올(보통 제29류)과 라놀린을 기초로 한 조제품, 예를 들어 의약 물질이나 향료 물질이 첨가된 라놀린(제3003호 · 제3004호나 제33류)은 제외한다. 또 라놀린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화학적으로 크게 변성한 라놀린, 예를 들면, 수용성이 있을만큼 에톡시레이트화(ethoxylated)한 라놀린도 제외한다(보통 제3402호).

울그리스는 수증기로 증류하여 압착할 경우에는 액체 · 고체와 잔유물로 분리된다.

울그리스 올레인(wool grease olein)으로 알려진 액체는 탁하며 적갈색이고 울그리스의 약한 냄새가 있다. 알코올 · 디에틸에테르 · 휘발유 등에 용해된다. 방직공장에서 직물의 기름 첨가제로 사용한다.

고체 상태 부분(**울그리스 스테아린**)은 왁스(wax) 상태의 물질이며 황갈색으로서 울그리스의 강한 냄새가 있으며 끓는 주정과 그 밖의 유기용제에 용해된다. 이는 가죽공업 · 윤활제와 점착성 그리스의 조제 · 양초와 비누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울그리스 잔유물(wool grease residue)은 제외한다(제1522호).

15.06 -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동물성의 모든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제0209호나 이 류의 앞의 호에 분류하는 것들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돼지·가금(家禽)류·소·면양·염소·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얻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동물 지방과 라드유(lard-oil)·올레오유(oleo-oil)·탈로우 유(tallow-oil)·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얻어진 기름과 울그리스(wool grease)에서 얻어진 기름을 제외한 모든 동물기름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말·하마·곰·토끼·참게(land-crab)·거북(turtle) 등에서 얻은 지방**[이들 동물의 뼈·골수나 웨이스트(waste)에서 얻어진 지방을 포함한다]
- (2) **우각유(neat's-foot oil) 이와 유사한 기름** : 소·말이나 양의 다리나 경골(shin bone)을 끊어서 얻은 그리스(grease)를 냉압하여 얻은 것이다.
이들은 담황색으로 감미가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안정하고 주로 정밀기계[시계·미싱·화기(fire-arms) 등]의 윤활제로 사용한다.
- (3) **골유(bone oil)** : 골지방(bone fat)을 압착하거나 골(bone)을 열수로 처리하여 얻은 것이다. 이는 냄새가 없는 황색 액체 기름이며 쉽게 산패되지 않는다. 이는 정밀기계의 윤활제와 가죽의 완성가공용에 사용한다.
- (4) **골수(marrow)에서 추출한 기름** : 백색이나 황색의 물품으로서 의약품용이나 향료용으로 사용한다.
- (5) **난황유(egg-yolk oil)** : 단단하게 삶은 알의 노른자위를 압착하거나 용제로 추출하여 얻은 것이다. 이는 투명한 황금색이나 적색의 기름으로서 삶은 알의 냄새가 있다.
- (6) **거북알(turtle-egg)의 기름** : 담황색이며 냄새가 없고 식용에 사용한다.
- (7) **누에 번데기에서 추출한 번데기 기름(chrysalis oil)** : 이는 현저히 불쾌한 냄새를 가진 적갈색의 기름이며, 비누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돼지의 지방이나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1호**)
- (b) 소·양·염소에서 얻은 지방(**제1502호**)
- (c) 어류·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 그리고 그 분획물(**제1504호**)
- (d) 주로 피리딘염기(pyridine base)로 구성된 물품[디펠유(Dippel's oil)로 알려져 있으며, 때로 골유(bone oil)라고 불린다](**제3824호**)

15.07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1507.90 - 기타

수압 프레스나 익스펠러 프레스나 용제를 사용해서 대두[글리신 막스(*Glycine max*)]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것이 대두유(soya-bean oil)이다. 이것은 옅은 노란색이며, 식용과 공업용[예: 마가린·샐러드드레싱·비누·페인트·바니시·가소제(plasticiser)와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등의 제조]에 함께 사용하는 비휘발성 건성유이다.

이 호에는 대두유 분획물(fraction)도 포함한다. 그러나, 가공하지 않은 대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대두 레시틴(soya-bean lecithin)은 **제2923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507.10호

압착법에 의하여 채취된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식물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유(粗油 : crude oil)”로 간주한다. 고히 입자에서 기름을 분리하기 위하여 중력, 압력, 원심분리력과 같은 기계적인 힘만으로 기울여 따르기(decantation)·원심 분리법(centrifugation)이나 여과법(filtration) 이외에는 다른 공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모든 흡착식여과처리법·분획화나 그 밖의 물리적이거나 화학적 처리한 것은 제외된다. 추출법에 의해 채취된 기름도 “조유(粗油 : crude oil)”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에는 압착법(pressure)에 의해 채취된 기름과 비교해서 색·향기나 맛에서 변화가 없어야만 한다.

15.08 -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 조유(粗油)

1508.90 - 기타

땅콩 기름(ground-nut oil이나 peanut oil)은 땅콩의 종자(*Arachis hypogaea*)에서 용제추출법(solvent extraction)이나 압착법(pressing)의 의해 얻어진 불건성유(non-drying oil)이다.

여과하거나 정제한 기름은 예를 들면, 샐러드유·조리용이나 마가린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낮은 등급(inferior grade)의 것은 비누나 윤활유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1508.10호

소호 제1507.10호 해설 참조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1509.20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 1509.30 - 버진 올리브유
- 1509.40 -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 1509.90 - 기타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올레아 유로파에아 L.(*Olea europaea* L.)] 열매에서 얻어진 기름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버진 올리브유(virgin olive oil)는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상태(특히 온도상태를 지칭한다)에서 전적으로 기계적 수단이나 그 밖의 물리적 수단에 의해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얻어지는 기름으로서, 세척·기울여 따르기·원심분리나 여과 이외의 다른 처리는 하지 않은 것이다.

- (A)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Extra virgin olive oil)** :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특정한 상태(특히 가공 전의 올리브 처리나 가공·저장 동안의 온도 조절에 관한 상태를 지칭한다)하에서 얻어지는 기름이다. 이것은 관능적 특성 측면에서 과일 맛이 나며 결함이 없다. 이것은 투명하고 옅은 노란색에서 녹색을 띠며, 천연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0.8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올리브유와 구분이 가능하다.
- (B) **버진 올리브유(Virgin olive oil)** : 기름에 어느 정도의 작은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특정한 상태(특히 가공과 저장 동안의 온도상태를 지칭한다)에서 얻어진 기름으로서,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관능적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특유의 과일 맛이 나며, 투명하고 옅은 노란색에서 녹색을 띠며 천연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다. 버진 올리브유는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2.0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올리브유와 구분할 수 있다.
- (C)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Other virgin oil)** : 추가적인 정제 없이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얻어지는 기름이며, 두 개의 범주, 즉, 램판트 버진 올리브유(lampante virgin olive oil)와 일반 버진 올리브유(ordinary virgin olive oil)를 포함한다.
- (D) **기타** : 앞에서 열거한 소호의 버진 올리브유에서 본래의 글리세라이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제방법을 통해 얻어진 기름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개의 범주를 포함한다.
 - (1) **정제한 올리브유(Refined olive oil)** :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0.3 그램 이하이고 코덱스 규격 33-1981에 상응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침전물이 없는 맑고 투명한 기름으로 옅은 노랑색을 띠며 특유의 향과 맛이 없어 식용에 적합하다.
 - (2) **정제한 올리브유와 버진 올리브유로 조성된 올리브유(Olive oil)** : 정제한 올리브유와 버진 올리브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기름이며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다. 이것은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1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 규격 33-1981의 제3절에 상응하는 그 밖의 특성들을 가진다. 이 물품은 옅은 노란색에서 녹색을 띠며, 좋은 향기와 맛을 지니고 있다.
- (E) 위의 (A)와 (D)에 규정한 기름의 **분획물(fraction)**과 혼합물(blend)

*
* *

이 호에서는 올리브 퍼미스유와 이것을 버진 올리브 유와 혼합한 것(제1510호)이나 올리브유로부터 얻은 리에스테르화한 기름(제1516호)을 제외한다.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10 -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1510.90 - 기타

이 호에는 **제1509호**의 기름을 **제외하고** 올리브에서 얻어진 기름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올리브 퍼미스(olive pomace)에서 얻어진 기름을 포함한다. 올리브 퍼미스는 제1509호의 올리브유를 추출한 후 남은 올리브의 잔류 고형물(固形物)이다. 이러한 잔류 페이스트는 일정하지는 않은 양의 물과 기름을 여전히 함유하고 있다.

이 호의 기름은 가공하지 않은 조(粗) 상태이거나 정제하거나 또는 그 밖에 처리를 한 것일 수 있다. 다만, 글리세라이드 구조에 대한 변형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호에는 분획물과 제1509호의 기름이나 분획물과 이 호에 해당되는 기름이나 분획물의 혼합물도 분류한다. 가장 일반적인 혼합물은 정제한 올리브-레시듀 유와 버진 올리브유의 혼합물로 구성한다.

(A)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 제1509호의 올리브유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용제추출(solvent-extraction)이나 그 밖의 물리적인 처리를 통해 얻어진 기름이다. 이 기름은 국제올리브협회(International Olive Council)의 규격(COI/T.15/NC No 3)에 명시되어 있는 이 물품 범주의 특성에 따라 제1509호의 물품과 구분할 수 있다. 이 기름은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한다.

(B) **정제된 올리브 퍼미스유** : 가공하지 않은 올리브 퍼미스유에서 정제법(본래의 글리세라이드 구조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에 의해 얻어진 기름이다.

정제된 올리브 퍼미스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정제된 올리브 퍼미스유** : 이것은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0.3 그램 이하이고 코텍스 규격 33-1981에 상응하는 그 밖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옅은 노란색에서 갈색빛의 노란색을 띠고, 좋은 향기와 맛을 가지며, 식용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 물품은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도 있다.

(2) **올리브 퍼미스유**는 정제된 올리브 퍼미스유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A) 그리고/또는 버진 올리브유(B)의 혼합물로 구성된 기름이다. 이것은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1 그램 이하이고 이 물품 범주에 대해 코텍스 규격 33-1981에 상응하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옅은 노란색에서 녹색을 띠고, 좋은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으며, 식용에 적합하다.

*
* *

이 호에서는 올리브유에서 얻은 리에스테르화유를 **제외한다(제1516호)**.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 - 조유(粗油)

1511.90 - 기타

팜유(palm oil)는 기름야자나무 열매의 과육에서 얻어진 식물성 지방이다. 주요 생산원은 아프리카 기름야자나무[엘라에이스 귀닌시스(*Elaeis guineensis*)]로서 이는 열대아프리카가 본원지이나 중앙아프리카·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성장한다. 그 밖의 다른 예로서는 엘라에이스 멜라노코카(*Elaeis melanococca*)[놀리 팜(noli palm)으로도 알려져 있다]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파라과이 팜(coco mbocaya)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크로코미아(*Acrocomia*) 팜종이 있다. 이들 팜유는 추출법(extraction)이나 압착법(pressing)에 의해 얻어지며 상태와 정제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이들 팜유는 팔미트산과 올레산을 대단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기름야자나무에서 얻은 팜핵유(palm kernel)(제1513호)와 구별한다.

팜유(palm oil)는 비누·양초·화장품이나 화장품품류의 제조·유통유·용융 주석 도금·팔미트산 제조 등에 사용한다. 정제한 팜유(refined palm oil)는 식료품(예: 튀김용 지방과 마가린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는 **분류하지 않는다(제1513호)**.



[소호해설]

소호 제1511.10호

소호 제1507.10호의 해설서 참조

15.12 -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 조유(粗油)

1512.19 -- 기타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1512.29 -- 기타

(A) 해바라기씨유(sunflower-seed oil)

해바라기씨유는 보통의 해바라기[헬리안투스 아누스(*Helianthus annuus*)]에서 얻어지며, 옅은 황금빛 노란색의 기름이다. 그것은 셀러드유 · 마가린과 라드(lard) 대용물로 쓰인다. 페인트(paint)나 바니시(vernish) 공업에 유용하도록 변성한 것은 반건성 상태이다.

(B) 잇꽃유(safflower oil)

대단히 중요한 염료 식물인 잇꽃(*Cathamus tinctoris*)은 그 씨에서 건성의 식용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식품과 의약품에 쓰이며, 알키드수지(alkyd resin) · 페인트와 바니시 등에 쓰인다.

(C) 목화씨유(cotton-seed oil)

이것은 가장 중요한 반건성유(semi-drying oil)이며 고시피움(*Gossypium*)속의 여러 가지 종자의 핵(kernel)에서 채취한다. 목화씨유(cotton-seed oil)는 예를 들면, 가죽 드레싱용, 비누 · 윤활유 · 글리세롤(glycerol)과 합성 방수제의 제조용 및 화장용 크림의 기본재료(base)로서 공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순수한 정제유는 셀러드나 조리용 기름으로서 그리고 마가린과 라드대용물의 제조에 가치가 높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1512.11와 1512.21호

소호 제1507.10호의 해설서 참조

15.13 -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 -- 조유(粗油)

1513.19 -- 기타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 조유(粗油)

1513.29 -- 기타

(A) 야자(coconut : copra)유

이것은 야자[코코스 누시페라(*Cocos nucifera*)]의 건조한 과육이나 소위 코프라(*Copra*)에서 얻어진다. 또한 신선한 야자 과육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건성유는 담황색이나 무색이며 섭씨 25도 미만에서는 고체 상태이다. 야자유는 비누제조용·화장품류나 화장용품 제조용·윤활성 그리스 제조용·합성세정제·세탁용 조제품이나 청정용 조제품과 지방산(fatty acid)·지방성 알코올과 메틸에스테르(methyl ester)의 원료 등으로 사용한다.

정제한 야자유(refined coconut oil)는 식용이 가능하며 마가린·식이 보조재 등과 같은 식품용에 사용한다.

(B) 팜핵유(palm kernel oil)

이 백색의 기름은 기름야자나무[주로 아프리카 기름야자나무(*Elaeis guineensis*)] 열매의 과육보다는 너트의 핵(核 : kernel)으로부터 얻어진다(제1511호의 해설 참조). 이것은 좋은 향기와 견과류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가린과 사탕공업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C) 바바수유(babassu oil)

이러한 불건성유(non-drying oil)는 바바수 팜[오르비그나 마르티아나(*Orbignya martiana*)와 *O. 올레이페라(O. oleifera)*]으로부터 얻어진다. 이것은 너트의 핵(核 : kernel)을 압착하여 얻는다.

바바수유는 비누와 같은 공산품 제조에 사용한다. 정제한 것은 식품을 제조할 때 팜핵유 대용품으로도 쓰인다.



[소호해설]

소호 제1513.11호와 제1513.21호

소호 제1507.10호 해설서 참조

15.14 -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 -- 조유(粗油)

1514.19 -- 기타

- 기타

1514.91 -- 조유(粗油)

1514.99 -- 기타

(A) 유채유(rape oil, colza oil)

브라시카(*Brassica*), 특히 *B. 나퍼스(B. napus)*와 *B. 라파(B. rapa)*[또는 *B. 캠페스트리스(B. campestris)*]의 여러 가지 종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반건성유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채유로 분류한다.

이들 기름은 보통 높은 에루크산(erucic acid)가(價)를 갖고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cid)을 가진 유채유[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cid)을 함유하는 특별하게 개발된 유채의 변종의 씨로부터 생산된다]를 분류한다[예: 카놀라유나 유럽산 유채유(rape oil, colza oil)인 “더블제로(double zero)”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샐러드 드레싱·마가린 제조 등에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윤활유 첨가제와 같은 공산품 제조에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콜자유(colza oil)로 불리는 정제한 기름은 식용으로도 사용한다.

(B) 겨자유(mustard oil)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종으로부터 채취된 비휘발성 식물기름이다. 백색겨자[시납시스 알바(*Sinapsis alba*)와 브라씨카 히르타(*Brassica hirta*)], 검은 겨자[브라씨카 니그라(*Brassica nigra*)], 인도겨자[브라씨카 준세아(*Brassica juncea*)]. 이것은 보통 높은 수준의 에루크산가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의약품·조리용이나 공업용 등에 사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91호

소호 제1507.10호의 해설서 참조

15.15 -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 -- 조유(粗油)

1515.19 -- 기타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 조유(粗油)

1515.29 -- 기타

1515.3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15.6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515.90 - 기타

이 호에는 **제 1507부터 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그 분획물(총설 (B) 참조)을 분류한다. 다음은 특히 상업상 중요한 것들이다.

- (1) **아마씨유(linseed oil)** : 아마[리눅 우시타시씨멈(*Linum usitatissimum*)]의 종자에서 채취한다. 이 기름은 가장 중요한 건성유의 하나이다. 아마씨유는 노란색에서부터 갈색까지로 구분되며, 쓴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산화되면 질긴 탄성의 필름 모양으로 된다. 이 기름은 주로 페인트·바니시·기름천(oil cloth)·퍼티(putty)·연성비누(soft soap)·인쇄용 잉크·알키드 수지(alkyd resin)이나 의약품 제조용에 사용한다. 냉압(cold-pressed) 아마씨유는 식용이 가능하다.
- (2) **옥수수유[maize(corn) oil]** : 옥수수(maize) 씨에서 채취한다[지방질(脂肪質)의 대부분(약 80%)은 씨눈(germ)에 함유되어 있다]. 조유(粗油)는 예를 들면, 비누·윤활유·가죽드레싱 등과 같은 여러 공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제한 기름은 식용이 가능하며, 요리, 빵 제조, 다른 기름과의 혼합용 등으로 사용한다. 옥수수유는 반건성유이다.
- (3) **피마자유(castor oil)** : 리시너스 컴뮌리스(*Ricinus communis*)의 종자에서 채취한다. 이것은 불건성의 진한 기름이며, 일반적으로 무색이나 옅은 색의 기름으로서, 전에는 주로 설사약으로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래커나 니트로셀룰로오스의 가소제(plasticizer)·2염기산 제조·탄성중합체나 접착제·계면활성제·유압용 액체 등과 같은 공업용에 쓰인다.
- (4) **참기름(sesame oil)** : 이는 1년생 초본인 참깨의 종자에서 채취한다. 이것은 반건성유이며, 고급의 것은 쇼트닝(shortening)·샐러드유·마가린과 이와 유사한 식품에 사용한다. 저급의 것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 (5)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 단세포기름(SCO)라고도 부르며, 균류(효모를 포함한다)·박테리아나 미세조류(microalgae)와 같은 채유(採油)에 적합한 미생물로부터 지방질(lipid)을 추출하여 얻는다. 이러한 지방질(lipid)은 실온(室溫)에서 액체 상태인 다불포화(多不飽和) 지방산(예: 아라키돈산이나 리놀레산)으로 주로 이루어진 트리아실글리세롤(TAG)을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식물성 기름이 사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다세포 미생물체에서 얻은 기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예:

- (a) 아라키돈산 기름(ARA) : 모르티에렐라 알피나(*Mortierella alpina*) 균에서 얻으며, 노란색이거나 오렌지-노란색의 액체로서, 식품 재료·동물사료·의약품이나 화장품으로 사용된다.

(b) 스킴조키트리움 기름(schizochytrium oil) : 스킴조키트리움 속(*Schizochytrium sp.*)의 미세조류(microalgae)에서 얻으며, 식품 재료로 사용된다.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미생물에는 특히 효모, 균류, 미세조류(microalgae)와 박테리아가 있다.

- (6) **동유(tung oil)**(차이나-우드유) : 이는 알류리츠(*Aleurites*)속[예: A. 포르디(*A. fordii*), A. 몬타나(*A. montana*)]의 다른 종의 종자로부터 채취한다. 이것의 색깔은 열은 노란색에서부터 어두운 갈색이며, 대단히 빨리 건조되며 방부력과 방수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의 주용도는 바니시와 페인트 제조용이다.
- (7) **호호바유(jojoba oil)** : 이것은 흔히 액체 왁스라고 설명하는 것이며, 무색부터 노란색까지의 냄새 없는 액체이며, 주로 고급 지방족 알코올의 에스테르로 구성되어 있고, 시몬드시아(*Simmondsia*)속(*S. californica*나 *S. chinensis*)의 사막관목의 종자에서 얻어지며, 화장품 조제품에서 향유고래 기름의 대체품으로 사용된다.
- (8) **식물성 텔로우(vegetable tallow)**로 알려진 물품(주로 보르네오 텔로우·중국 식물성 텔로우) : 특정 채유용의 종자를 가공하여 얻는다. 보르네오 텔로우는 결정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케이크 형태로, 바깥쪽은 백색이고 안쪽은 녹황색이며, 중국 텔로우는 고체 상태의 왁스 상태 물질로 녹색과 약간의 방향성 냄새를 가지며 기름 성질의 촉감이 있다.
- (9) 상거래 관습상 **양매 왁스(myrtle-wax)**와 **일본 왁스(Japan wax)**으로 알려진 물품 : 실제상 식물성 지방이다. 양매 왁스는 여러 종류의 도금양의 장과(myrtle berries)에서 추출한 것이며, 왁스 상태의 외관과 발삼(balsam)을 연상시키는 특유의 향을 가진 단단하고 녹황색의 케이크 모양으로 제시한다. 일본 왁스는 중국산이나 일본산의 러스(*Rhus*)과의 여러 종류의 수목의 과실에서 추출한 물질이며 녹색·황색이나 백색의 왁스 상태의 외관을 가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원판 모양의 형태이며, 결정성으로 부서지기 쉽고 희미한 수지성의 향이 있다.



[소호해설]

소호 제1515.11호와 제1515.21호

소호 제1507.10호의 해설서 참조

15.16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1516.1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1516.2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1516.3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이 호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으로서, 아래에서 규정한 종류의 특정한 화학적 변형을 한 것이 포함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을 위와 유사하게 처리된 것도 분류한다.

(A) 수소를 첨가한 지방과 기름

수소첨가는 지방과 기름을 촉매(보통 미세한 니켈) 존재 하에서 적당한 온도와 압력에서 순수한 수소와 접촉하여 행하여지는데 불포화 글리세라이드(glyceride)[예: 올레산(oleic acid)·리놀레산(linoleic acid) 등]을 높은 용융점의 포화 글리세라이드[예: 팔미트산(palmitic acid)·스테아린산(stearic acid) 등]로 변형시켜 줌으로써 순지방의 용점이 높아지게 하고 기름의 경도를 증가시켜 준다. 수소첨가의 정도와 이 물품의 최종 굳음 정도는 공정상태와 처리 기간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 것을 분류한다.

- (1) 부분적으로 수소첨가된 것(이들 물품이 페이스트(paste)층과 액체층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일지라도). 또한 이 첨가는 녹는 온도(용융점)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시스형(cis-form)을 트랜스형(trans-form)으로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 (2) 완전히 수소첨가된 것(예: 페이스트(paste) 지방이나 고체 지방으로 변한 기름)

보통 수소가 첨가되는 물품은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동물의 기름과 특정의 식물성 기름(목화씨유·참기름·땅콩 기름·콜자유·대두유·옥수수유 등)이다. 이와 같은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기름은 때때로 제1517호의 조제 식용지방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수소 첨가는 기름의 굳음 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에 의한 산화(oxidation)로 변질되는 경향이 적어지고 맛과 냄새를 개선시키며, 표백됨으로써 외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부분에는 또한 수소를 첨가한 피마자유[소위 “오팔왁스(opal was)”]를 포함한다.

(B) 인터에스테르화(inter-esterified), 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

- (1) 인터에스테르화한 지방과 기름(또는 트랜스에스테르화한 지방과 기름) : 지방과 기름의 굳기 정도는 지방과 기름에 함유하고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지방산 라디칼(fatty acid radicals)을 적당히 재배열함으로써 증가한다. 에스테르의 필요한 상호작용과 재배열은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촉진한다.
- (2) 리에스테르화한 지방과 기름(에스테르화한 지방과 기름이라고도 한다) : 이것은 유리(遊離) 지방산의 혼합물이나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에시드유(acid oil)를 가진 글리세롤(glycerol)과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이다. 트리글리세라이드 내에서의 지방산 라디칼(fatty acid radical)의 배열은 일반적으로 천연유(natural oil)에서 발견되는 배열과 상이하다.

올리브에서 얻어진 기름으로서 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3)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 : 이것은 불포화지방산라디칼(unsaturated fatty acid radical)을 시스형(*cis*-form)에서 트랜스형(*trans*-form)으로 상당히 변환시키는 방법에 의해 가공한 지방과 기름이다.

위에 규정한 생산품은 비록 그들이 왁스성을 가지고 있는 것·상당한 탈취나 유사한 정제공정을 거친 것·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구조의 변화(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와 같이 식용 목적으로 더욱 조제된 수소첨가유 등을 한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 1517호)**. 또한 이 호에서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지방과 기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hydrogenated)·인터에스테르화(inter-estrified)·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을 **포함하지 않는다(제 1517호나 제 1518호)**.

15.17 - 마가린,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1517.90 - 기타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 (1) 여러 가지 동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
- (2) 여러 가지 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
- (3) 여러 가지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 ; 또는
- (4)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 중 둘 이상의 것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 (예: 탈지분유로서) · 교반 · 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 · 전분 · 착색제 · 향미료 · 비타민 · 베타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

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만든 식용 조제품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유화 · 교반 · 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

이 호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지방이나 기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 · 인터에스테르화(inter-esterified) · 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 · 엘라이딘화(elaidinised)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이것은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이들 지방이나 기름의 혼합물에서 얻어진 보통 노란색의 가소성 있는 덩어리이다. 이것은 유중수적(油中水滴)형(water-in-oil type)의 에멀전으로, 보통 외관 · 견고성 · 색 등에 있어서 버터와 유사하게 만든 것이다.

(B) 이 류의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은 제외한다) ; 예: 이미테이션 라드(imitation lard) · 액체 마가린과 쇼트닝(shortening)(구조 조정한 지방이나 기름에서 생산된 것)

이 호에는 이 류의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으로서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 단순히 정제된 것이나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지방이나 기름은 제외하므로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서는 베타나 유지방을 전 중량의 15% 초과 함유하고 있는 조제품을 제외한다(제21류).

**제3부
15.17**

또한 이 호에서는 수소첨가(hydrogenated)·인터에스테르화(inter-esterified)·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 뿐만 아니라 텔로우[tallow : 수지(獸脂)]나 라드(lard)를 압축함으로써 얻은 물품(제1503호)[변성(modification)이 하나의 지방과 기름에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제1516호).



[소호해설]

소호 제1517.10호와 제1517.90호

소호 제1517.10호와 제1517.90호에서 마가린의 물리적 특성은 섭씨 10℃에서의 시각적 검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18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A)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부분에는 점도·건성(공기 중에 방치할 경우 산소를 흡수하여 탄력성의 피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증진시키거나 그 밖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공을 한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그들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예:

(1) 보일드유(boiled oil)나 산화유(oxidised oil) : 일반적으로 소량의 산화제를 첨가하여 기름을 열처리하여 얻으며, 페인트와 바니시공업에 사용한다.

(2) 브라운유(brown oil) : 부분적으로 산화나 중합한 기름이며, 기름을 가열하여 공기를 흡입하여 얻는다. 이는 절연 바니시(insulating varnish)·인조 가죽의 제조와 광물성 기름(mineral oil)을 혼합하여 윤활제(compound oil)의 조제에 사용한다.

리녹신(linoxyn)은 반(半)고체상의 고무질 물질로서, 리놀륨 제조에 사용하는 고도로 산화된 아마인유인데, 이것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3) 탈수 피마자유(castor oil) : 축매의 존재 하에서 피마자유를 탈수하여 얻으며,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제조에 사용한다.

(4) 황화유(sulphurised oil) : 분자 중에서 중합이 되도록 황이나 염화황으로 처리한 기름이다. 이같은 공정을 거친 기름은 비교적 신속히 건조되며 보통 건성유(dried oil)의 피막보다 물을 적게 흡수하는 피막을 형성하고 보다 큰 기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황화유는 방청 페인트(anti-rust paint)와 바니시에 쓰인다.

이 가공이 더 이상으로 행해질 경우는 고체물이 얻어진다[기름에서 유도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5) 진공이나 불활성 가스 중에서 가열하여 얻은 중합유 : 특정 기름[특히 아마씨유와 동유(tung oil)]를 진공이나 불활성의 이산화탄소 가스 중에서 산화시키지 않고 섭씨 250도부터 300도까지에서 단순히 열처리하여 중합(polymerised)시킨 것이다. 이 가공은 보통 중합 스탠드유("stand-oil")로 불리는 진한 기름을 생성하며 특히 유연한 방수성의 필름을 형성하는 바니시 제조에 사용한다.

비중합물 성분이 추출된 스탠드유(Teka oils) 및 스탠드유끼리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

(6) 이 호에 포함되는 그 밖의 변성화한 기름

- (a) **말레산화한 유(maleic oil)** : 이는 대두유(soya-bean oil)의 과잉 산(酸)기를 에스테르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다가(polyhydric) 알코올로 결합하고 섭씨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한정된 양의 무수 말레산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이와 같이 얻은 말레산화 유는 양호한 건조 성질을 가지고 있다.
- (b) **건성유(drying oil)(예: 아마인유)** : 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량의 차가운 건조제(예: 붕산납·나프텐산아연·수지산코발트)를 첨가한 것이며, 바니시(vernish)나 페인트를 조제할 때 보일드 유(boiled oil)의 대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제3211호**의 조제한 액체 건조제(건조제의 농축액)와는 다른 것이므로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 (c) **에폭시화한 유(epoxidised oil)** : 예를 들면, 대두유를 과초산(peracetic acid)(미리 형성된 것이나 사용할 때 촉매가 있는 상태에서 과산화수소와 초산을 반응시켜서 형성한 것)으로 처리하여 얻으며, 가소제(plasticiser)와 안정제(stabiliser)(예: 비닐 수지용)로 사용한다.
- (d) **브롬화한 유(brominated oil)** : 예를 들면, 의약품 공업 등에서 정유(essential oil)의 유화안정제나 현탁안정제로 사용한다.

(B)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이 부분에는 특히 채종유·대두유와 소량의 동물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유지(油脂)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hydrogenated)·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리-에스텔화(re-esterified)나 엘라이딘화(elaidinised)한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단순히 변성한 유지(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 (b) 변성(modification)이 하나의 지방과 기름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텔화·리-에스텔화나 엘라이딘화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제1516호**)
- (c)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제2309호**)
- (d) 황산화유(즉, 황산으로 처리한 기름)(**제3402호**)

[15.19]

15.2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glycerol)은 순도 95% 미만(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의 물품이다. 이 물품은 지방이나 기름에서 분리하거나 프로필렌에서 인공적으로 얻어진다.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은 제조방법에 따라 여러 성질이 있다.

- (1) 물·산(acid)이나 알칼리(alkali)로서 가수분해(hydrolysis)하여 얻은 물품. 이는 불쾌하지 않은 냄새를 가진 달콤한 액체로서 황색에서 갈색까지의 색조가 있다.
- (2) 글리세롤 폐액(glycerol lye)에서 얻은 물품. 이는 담황색 액체로서 짙은 맛과 불쾌한 냄새가 있다.
- (3) 비누를 제조할 때 잔유물에서 유도한 물품. 이는 흑황색 액체로서 달콤한 향(매우 불순할 경우는 마늘 맛이 난다)과 다소 불쾌한 냄새가 있다.
- (4) 촉매나 효소 가수분해로 얻은 물품. 일반적으로 불쾌한 맛과 냄새를 가진 액체로서 다량의 유기 물질과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은 지방이나 기름과 그 밖의 알코올을 인터-에스테르화(inter-esterified)함으로써 얻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글리세롤 수(glycerol water)**(지방산 제조의 부산물)와 **글리세롤 폐액(glycerol lye)**(비누 제조의 부산물)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순도 95% 이상의 글리세롤(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제2905호**)
- (b) 의약품으로 만든 글리세롤이나 의료물질을 첨가한 글리세롤(**제3003호**나 **제3004호**)
- (c) 향을 첨가한 글리세롤이나 화장품을 첨가한 글리세롤(**제33류**)

15.21 - 식물성 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 · 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 왁스 · 고래 왁스(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10 - 식물성 왁스

1521.90 - 기타

(I) 식물성 왁스(wax)[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하며, 정제했거나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주요한 식물성 왁스는 다음과 같다.

- (1) **카르나우바 왁스(carnauba wax)** : 이는 특정의 팜 나무(*Corypha cerifera*나 *Copernicia cerifera*)의 잎을 삼출(滲出)하여 얻은 것이며 녹색·회색이나 황색으로 다소나마 기름의 성질이 있고 거의 결정성 구조로 부서지기 쉽고 건조의 유쾌한 냄새가 있다.
- (2) **오우리큐리 왁스(ouricury wax)** : 이는 특정의 팜 나무(*Attalea excelsa*)의 잎에서 얻어진다.
- (3) **팜 왁스(palm wax)** : 이는 특정의 팜 나무(*Ceroxylon andicola*)의 잎(葉)의 교차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삼출되고 나무의 줄기에서 수집한다. 보통 다공성의 부서지기 쉬운 둥근 모양의 조각으로 황백색이다.
- (4) **칸데릴라 왁스(candelilla wax)** : 이는 멕시코산식물(*Euphorbia antisiphilitica*나 *Pedilanthus pavonis*)을 물에 끓여서 얻으며, 딱딱하고 반투명이며 갈색 물질이다.
- (5) **사탕수수 왁스(sugar-cane wax)** : 이는 사탕수수의 표면에 자연의 상태로 존재하며 공업적으로는 사탕 제조시 생기는 깨끗한 찌꺼기에서 얻는데,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흑색이며 유연하고 사탕수수 당밀과 유사한 냄새가 있다.
- (6) **면 왁스(cotton wax)와 아마 왁스(flax wax)** : 이는 식물성 섬유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용제(solvents)로 추출하여 얻는다.
- (7) **오코틸라 왁스(ocotilla wax)** : 이는 멕시코에서 성장하는 수목의 나무 껍질을 용제로 추출하여 얻는다.
- (8) **파이장 왁스(pyzang wax)** : 이는 자바 지방에 있는 일종의 바나나 나무의 잎에서 발견되는 더스트(dust)와 같은 것에서 얻는다.
- (9) **에스파르토 왁스(esparto wax)** : 이는 에스파르토 풀(grass)에서 얻어지며 건조한 풀을 쪼갤 경우에 분진(dust)으로 수집한다.

이 호에는 식물성 왁스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정제한 것 · 표백의 것 · 착색의 것을 분류하며 케이크 상태 · 봉 상태 등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호호바유(jojoba oil)(**제1515호**)
- (b) 상거리 관습상 양매왁스(myrtle wax)와 일본왁스(Japan wax)로 알려진 물품(**제1515호**)
- (c) 동물성 왁스의 혼합물
- (d) 동물성 왁스 · 광물성 왁스나 인조왁스가 혼합된 식물성 왁스

(e) 지방·수지·광물성 물질과 그 밖의 물질(착색제를 제외)을 혼합한 식물성 왁스

이들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제34류에 분류한다(보통 제3404호나 제3405호).

(II) 밀랍(蜜蠟 : beeswax)과 그 밖의 곤충 왁스(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밀랍(蜜蠟)은 벌이 벌통 내에서 육각형의 벌집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물질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알갱이 모양의 구조로 담황색·오렌지색이나 때때로 갈색이며, 독특하고 유쾌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표백이나 정제를 하면 백색이나 미황색으로 대단히 경미한 냄새가 있다.

이는 특히 양초·왁스처리 천포(cloth)나 왁스처리 종이·매스틱(mastic)·광택제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그 밖의 곤충 왁스(insect wax) 중 잘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 (1) **락 왁스(lac wax)** : 셀락(shellac)을 알코올로 추출하여 얻은 것이다. 이는 셀락의 냄새가 있는 갈색의 덩어리 모양이다.
- (2) **중국 왁스(Chinese wax)**[곤충 왁스나 나무 왁스(tree wax)로 알려진 것]. 이는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는데, 특정의 물푸레나무(ash tree)의 가지에다 곤충이 분비해서 퇴적된 담백색의 풍해물(風害物)을 수집하여 정제(끓는 물로 녹여 여과)한 것이다. 이는 백색이나 황색의 광택이 있는 결정성의 맛이 없는 물질로서 텔로우(tallow)와 유사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 왁스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천연의 벌집상의 것을 포함한다), 용해시킨 것, 압착하거나 정제한 것과 표백이나 착색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곤충 왁스(insect wax)의 혼합물, 고래 왁스(spermaceti)·식물성 왁스·광물성 왁스·인조 왁스와 혼합한 곤충 왁스,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물질(착색제는 제외한다)과 혼합한 곤충 왁스 ; 이들 혼합물은 보통 제34류에 해당한다(제3404호나 제3405호).
- (b) 벌통용의 벌집으로 조제한 왁스(제9602호)

(III) 고래 왁스(spermaceti)(가공하지 않은 것·압착한 것이나 정제한 것으로서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고래 왁스 : 향유고래와 이와 유사한 고래의 머리의 빈공간이나 껍질 밑 지방층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에서 추출한 왁스상의 물질이다.

가공하지 않은 고래 왁스 : 약 1/3의 순수한 고래 왁스와 2/3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색이나 갈색의 덩어리 모양으로 불쾌한 냄새가 있다.

압착한 고래 왁스 : 지방이 모두 추출된 경우에 얻어진 것이다. 이는 작고 딱딱한 비늘 모양이며 황갈색이고 종이 위에 얼룩이 조금도 남지 않는다.

정제한 고래 왁스 : 압착한 고래 왁스를 희석한 가성소다 용액으로 처리하여 얻으며, 진주 모양의 광택을 가진 백색 무늬가 있다.

고래 왁스는 특정의 양초 제조·향료·의료품이나 윤활제로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물품은 착색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고래 왁스를 분리한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정제한 향유고래 기름은 **제외한다(제1504호)**.

15.22 -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A) 데그라스(degras)

이 호에는 천연의 데그라스(natural degras)와 인조 데그라스(artificial degras)의 양자를 분류하는데 가죽공업에서 그리싱(stuffing)제로 사용한다.

천연 데그라스["뮐렌(moellen)"이나 "소드 오일(sod oil)"로 알려진 것]은 새미가죽을 기름으로 유연화 할 때에 생긴 잔유물이며 압착이나 용제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해양 동물의 기름과 기름의 산화로 생긴 수지상 물질, 물, 광물질(소다·석회·황산염)과 함께 털(hair)·얇은 막과 껍질(skin)의 웨이스트(waste)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 데그라스는 매우 진한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균일한 액체로서, 강한 물고기 기름의 냄새가 있고 황색이나 암갈색이다.

인조 데그라스는 원래 물고기 기름(이들 기름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울그리스(wool grease)·텔로우(tallow)·로진유(rosin oil) 등과 때로는 천연의 데그라스를 혼합하여 산화나 유화나 중합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혼합물은 진한 황색 액체(천연 데그라스보다 액체 상태이다)로 물고기 기름냄새의 특유의 냄새가 있고, 털·얇은 막이나 껍질의 웨이스트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방치할 경우는 두 가지의 층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밑바닥에는 물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단순히 산화나 중합화된 물고기 기름(**제1518호**)·황산화유(**제3402호**)와 가죽의 그리싱(stuffing)용 조제품(**제3403호**)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알칼리 용액으로 처리하거나, 지방성 히드록산의 황산으로 침전시켜 얻은 데그라스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상거래 관습상 유화형태(emulsion)로 존재한다.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이다. 이는 비누와 윤활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소프 스톡(soap-stock)** : 유리(遊離) 지방산을 염기(수산화나트륨)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이며, 이는 조(粗)비누·중성유나 지방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점착물로, 추출한 원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색조(갈황색·백색·갈녹색 등)를 나타내며, 비누 제조에 사용한다.
- (3)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경유(light petroleum)에는 부분적으로 녹는다. 이는 매스틱(mastic)·내수성 판지·전기 절연물의 조제에 사용한다.
- (4) **울그리스(wool grease)를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이는 외관이 스테아린(stearin) 잔유물과 같으며 그와 동일 용도에 사용한다.
- (5)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며 직물의 완성가공과 종이 방수에 사용한다.

(6) 지방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함유하고 있는 사용한 탈색용 흡

(7) 동물성 왁스·식물성 왁스의 여과 잔유물 : 어느 정도의 왁스를 함유하는 불순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수지 잔유물(greave), 돼지의 지방과 그 밖의 동물의 지방을 용출하여 얻은 막질(membranous)의 잔유물
(제2301호)

(b) 식물성 기름을 추출할 때 얻어지는 오일케이크(oil-cake), 잔류 펄프와 그 밖의 잔유물[유의 잔재(dregs)는 제외한다](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제 16 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제4류 주 제6호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脞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 곤충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脞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호주: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설육(脞肉)·피·곤충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이들 조제품에는 육·설육(脞肉)이나 곤충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의 소량으로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만으로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총설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脞肉)[예: 족(feet)·껍질·염통·혀·간·장·위]·피(blood)·곤충·어류(껍질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4류 주 제6호·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소시지나 유사한 물품

(2) 끓인 것·증기로 찐 것·구운 것·튀긴 것·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 할 때에 조리되기도 하는 훈제한 어류와 훈제한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 껍데기가 붙은 채로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제0306호),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제0307호)과 조리된 어류·조리된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제0309호)은 제외한다.

(3) 추출물(extract), 즙이나 마리네이드(marinades)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어란(魚卵: fish eggs)으로 조제한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松露: truffled)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한 것 등

제4부
제16류

(4) 이 류의 물품(즉,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脞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만을 기본 재료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어류 등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으로 소량 함유될 수 있음은 물론, 조미·저장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물품이 제16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제2류와 제3류에 해당되는 물품과 제16류에 해당되는 물품의 차이점은 제2류와 제3류의 총설을 참조

또한 이 류에는 소시지·육·설육(脞肉)·피(blood)·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 채소·스파게티·소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소위 말하는 “조제식(prepared meal)”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脞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위에서 규정한 물품을 둘 이상(예: 육과 어류) 함유한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중량이 더 큰 성분(또는 성분들)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경우에 있어 중량은 제시 당시의 조제품에 들어있는 육·어류 등의 실 중량을 말하는 것이며, 조제하기 전의 그 물품의 중량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의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 **제2104호**의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들은 각기 그들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식용에 적합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육(肉)이나 설육(脞肉)으로 만든 것(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것을 포함한다)(**제0210호**)·어류로 만든 것(**제0309호**)·곤충으로 만든 것(**제0410호**)
- (b)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으로서, 곤충으로 만든 것(**제0511호**)·육(肉)으로 만든 것(바다에 사는 포유동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어류나 갑각류로 만든 것·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만든 것(**제2301호**)
- (c) 육(肉)·설육(脞肉)·어류 등을 기본 재료로 한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제2309호**)
- (d) **제30류**의 의약품

16.01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즉, 육·설육(屑肉)(장과 위를 포함한다)·곤충을 잘게 썰거나 다진 것, 또는 피(blood)를 장이나 위·방광·껍질이나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이거나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즉, 원통 모양이나 그 비슷한 형태로서, 물품의 횡단면은 원형·타원형이나 직사각형(모서리가 다소 둥근 면이 있는)을 이룬다.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 것이나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방·전분·조미료·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또한 육이나 설육(屑肉)의 비교적 큰 조각(예: 한입 크기)을 함유한 것도 있다.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썰었거나 밀폐용기에 들어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육(肉)을 기본 재료로 한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예: 프랑크푸르터(Frankfurter)·살라미(salami) 등]
- (2) 간 소시지(liver sausage)[가금(家禽 : poultry)의 간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 (3) “블랙푸딩(black pudding)”이나 “화이트 푸딩(white pudding)”
- (4) “앙들렛(andouillette)”[돼지 등의 소장(小腸)으로 만든 소시지]·세이브로이(saveloy)·볼로나(bologna)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특산품(similar speciality)
- (5) 파테(pâté)·육페이스트(meat paste)·갈런틴(galantine)이나 리에트(rilette)(다져서 통조림한 고기)로서, 소시지의 싸개에 넣어졌거나 소시지 특유의 모양으로 압착한 것

또한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함유하는 특정의 조제 식료품[일명 “조제식(prepared meal)”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세 번째 단락 참조).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미리 자르거나 다지지 않고 방광·장이나 이와 유사한 싸개(천연이거나 인조의 것)에 넣은 육류, 예: 로올드햄(rolled ham)이나 어깨살(일반적으로 **제0210호**나 **제1602호**)
- (b) 잘게 썰거나 다진 것으로서 비록 싸개에 들어 있을지라도 다른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생육(raw meat) (**제2류**)
- (c) 일반적으로 소시지 싸개로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싸개에 들어 있는 조제품(그러한 싸개가 없었다면 이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일반적으로 **제1602호**)
- (d) 터키롤(turkey roll : 칠면조 소시지)과 같이 가금(家禽)의 육을 조리하고 뼈를 바른 것(**제1602호**)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脞肉)·피·곤충

- 1602.10 - 균질화한 조제품
- 1602.2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1602.31 -- 칠면조로 만든 것
- 1602.32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 1602.39 -- 기타
 - 돼지로 만든 것
- 1602.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 1602.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 1602.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1602.50 - 소로 만든 것
-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하는 종류의 육(肉)·설육(脞肉)·피(blood)·곤충의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모든 것을 분류하는데,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1601호), 육(肉) 추출물(extract)과 육즙(제1603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육(肉)이나 설육(脞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2류의 총설 참조)·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튀긴 것·볶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 (2) 파테(pâté)·육페이스트(meat paste)·갈런틴(galantine)·리에트(rillette)(다져서 통조림한 고기). 다만, 이들이 제1601호의 소시지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분류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 제2류나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肉)과 설육(脞肉) :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송로(松露)를 첨가한 것·조미한 것(예: 후추와 소금으로 조미)이나 곱게 균질화한 것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항목(4) 참조).
- (4) 피(blood)의 조제품[제1601호의 “블랙푸딩(black pudding)”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5) 육(肉)·설육(脞肉)·피(blood)나 곤충을 진 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식(prepared meal)”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서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육(肉)이나 설육(脞肉)으로 속을 채운 파스타[라비올리(ravioli) 등](제1902호)
- (b)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제2103호)
- (c)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제2104호)

16.03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이 호의 추출물(extract)은 서로 다른 재료에서 얻어졌을지라도, 물리적 특징(외관·냄새·맛 등)과 화학적 조성이 매우 비슷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육(肉) 추출물**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하여 끓이거나 증기로 찌서 여과(filtration)나 원심분리(centrifuging)에 의하여 지방을 제외한 후 남은 액체를 농축하여 얻는 농축물이다. 이 추출물은 농축의 정도에 따라 고체나 액체일 수도 있다.
- (2) **육즙(meat juice)** : 생육(raw meat)을 가압하여 얻은 것
-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 : 어류의 추출물은 예를 들면, 청어나 그 밖의 어류의 살 부분(flesh)에서 추출된 물을 농축하거나 물고기의 가루[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부터 만든다. 제조과정에서 물고기의 맛을 나게 하는 성분(예: 해수어의 경우 트리메틸아민)의 전부나 일부가 제거되기도 하며 따라서 이러한 추출물은 육(肉) 추출물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 (4) **즙** : 날 것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압착하여 얻은 것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

추출물은 수프(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소스와 같은 어떤 조제식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육즙은 주로 식이요법의 식품(dietetic food)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육(肉)·어류 등의 추출물을 함유하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품[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입방체 모양의 수프와 브로드를 포함한다]. 이들은 그러한 물품에 추가해서 지방·젤라틴과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식염과 같은 다른 물질을 함유한다(**제2104호**).
- (b) **제2309호**의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가용물(soluble)
- (c) 이 호의 물품 중 단지 의약품질의 지지물(support)이나 매체로서 사용하는 약품(**제30류**)
- (d) 펩톤(peptone)과 펩톤염(**제3504호**)

16.04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응물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 연어

1604.12 -- 청어

1604.13 -- 정어리 · 사르디넬라(sardinella) · 브리스링(brisling) · 스프랫(sprat)

1604.14 -- 다랑어 · 가다랑어 · 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속]

1604.15 -- 고등어

1604.16 -- 멸치

1604.17 -- 뱀장어

1604.18 -- 상어 지느러미

1604.19 -- 기타

1604.2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 캐비아와 캐비아 대응물

1604.31 -- 캐비아

1604.32 -- 캐비아 대응물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 굽거나 · 튀기거나 ·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 할 때 조리된 훈제한 어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한 제0305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2) 식초 · 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 · 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나 그 밖의 성분을 가한 것), 생선 소시지, 생선 페이스트, “앤초비 페이스트”나 “연어 페이스트” 등으로 알려진 물품[어류로 제조한 페이스트(paste)에 지방을 가한 것] 등
-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fillet) · 조제한 어백(魚白)과 간(liver) · 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 참조)와 살균이나 멸균한 어류
- (4) 어류를 함유한 특정의 조제식료품[일명 “조제식(prepared meal)”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 (5) 캐비아(caviar) : 이는 철갑상어의 어란(魚卵 : roe)을 조제한 것이다. 이 어류는 수개의 지역(이태리 · 알라스카 · 터키 · 이란과 러시아)의 강에서 발견된다. 주된 종류는 큰 철갑상어(Beluga) · 쉬어프(Schirp) · 오시오트르(Ossiotr)와 소리그(Sewruge) 등이다. 캐비아는 보통 연한 알갱이의 덩어리 모양이며 직경이 2mm에서 4mm의 어란(魚卵 : egg)으로 구성되며 은회색에서 연흑색의 색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냄새가 강하고 약간 짠 맛이 난다. 또한 압력을 가하여 압축된 상태[즉, 균일상태의 페이스트(paste)]로 제시하는데, 때로는 작고 얇은 실린더나 작은 용기로 포장한다.

(6) 캐비어대용물 :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예: 연어·잉어·열기(pike)·다랑어·숭어·대구나 럼프피쉬(lumpfish)]의 알로 조제한 것으로서 캐비어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한다. 이것은 세척한 것·접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염장한 것·경우에 따라 압축하거나 건조한 것이다. 그러한 어란(魚卵 : fish egg)은 조미되거나 착색될 수도 있다.

이들 조제품은 모두 밀폐용기에 포장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어란(fish roe)[즉, 어류의 알(fish egg)]과 어백(魚白 : milt)(조제하거나 저장처리되지 않은 것과 제3류에 규정된 가공법에 의해서만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물로서 바로 먹는데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제3류)
- (b) 어류의 추출물(extract)와 즙(juice)(제1603호)
- (c) 어류로 속을 채운 파스타(제1902호)
- (d)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제2103호)
- (e)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조제식품(제2104호 참조)

16.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1605.10 - 게
 - 새우류
- 1605.21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 1605.29 -- 기타
- 1605.30 - 바닷가재
- 1605.40 - 그 밖의 갑각류
 - 연체동물
- 1605.51 -- 굴
- 1605.52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1605.53 -- 홍합
- 1605.54 -- 갑오징어와 오징어
- 1605.55 -- 문어
- 1605.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 1605.57 -- 전복
- 1605.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 1605.59 -- 기타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1605.61 -- 해삼
- 1605.62 -- 성게
- 1605.63 -- 해파리
- 1605.69 -- 기타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새우와 보리새우·바닷가재(lobster)·가재(crawfish·crayfish)·홍합·문어·오징어와 달팽이가 있다. 이 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주요한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는 성게·해삼과 해파리가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껍데기가 붙은 채로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소량의 화학 보존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제0306호)와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제0307호)은 제외한다.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糖類)[자당(蔗糖)·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와 그 밖의 물품
 -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료용품



소호주:

1.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2.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형인 천연 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미세결정들은 당밀(糖蜜)과 그 밖의 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국내주:

1. 제1701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총설

이 류에는 자당(蔗糖 : sucrose)·유당(乳糖 : lactose)·맥아당(maltose)·포도당(glucose)·과당(fructose)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인조 꿀, 캐러멜, 설탕의 정제하거나 추출의 결과로 얻는 당밀(糖蜜 : molasses), 설탕과자를 분류한다. 이 류의 고체 설탕과 당밀에는 착색제, 향미제[예: 시트르산(citric acid)이나 바닐라]나 인공 감미료[예: 아스파르탐(aspartame)이나 스테비아(stevia)]가 첨가된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단, 그것들이 설탕과 당밀로서의 원래의 특성(original character)을 유지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코코아나 초콜릿(백색 초콜릿은 **제외한다**)을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한 설탕과자와 감미를 가한 코코아가루(제1806호)
- (b) 제19류·제20류·제21류와 제22류의 단맛을 추가한 조제 식료품
- (c) 단맛을 가한 사료(제2309호)
- (d)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蔗糖)·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와 그의 수용액(제2940호)
- (e) 설탕을 함유한 의약품(제30류)

17.0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 -- 사탕무당

1701.13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701.14 -- 그 밖의 사탕수수당

- 기타

1701.91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9 -- 기타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사탕수수 줄기의 즙(juices)에서 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 사탕무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즙에서 만들어진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조당(粗糖 : crude sugar)이나 **원당(raw sugar)**은 갈색 결정체나 다른 고체 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당(蔗糖 : sucrose) 함유량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소호주 제1호 참조). 이들은 보통 정제당 제조용으로 가공처리된다. 그러나 원당은 정제하지 않고도 식용에 적합할 정도로 높은 순도를 가진 것도 있을 수 있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정제당**은 원당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이다. 이들은 보통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순도로 시판되거나, 작은 정육면체·덩어리·슬래브·봉 모양으로 시판되거나, 규칙적으로 성형한 조각이나 자른 조각으로 시판한다.

위에서 규정한 원당이나 정제당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 설탕(brown sugar)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화하여 얻은 커다란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 설탕 캔디(sugar candy)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사탕무당(beet sugar)과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고체형(분말을 포함한다)일 때만 임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류에는 향미제(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가 첨가될 수도 있다.

설탕의 수용액으로 구성된 사탕무당과 사탕수수당의 당시럽은 향미(香味)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702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하며 **제21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설탕의 성질을 잃어버린 고체 형태(알갱이나 가루를 포함한다)의 조제품으로서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제2106호)**.

또한 이 호에는 고체 형태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을 포함한다(그것의 생산원에 상관없다). 사탕수수당(cane sugar)이나 사탕무당(beet sugar) 이외의 원천에서 채취된 자당(蔗糖)(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제1702호)**.



[소호해설]

소호 제1701.12호·제1701.13호와 제1701.14호

상거래 관습상 사탕수수 조당(粗糖)은 항상 0.1%를 초과하는 전화당(invert sugar)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사탕무 조당(粗糖)의 전화당 성분은 보통 0.1% 미만이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가공하지 않은 당은 수용액의 샘플들을 마개를 막은 용기에 넣고 하룻밤 동안 저장해 두어서 만든 냄새의 차이에 의해서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17.02 -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이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11 --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1702.19 -- 기타

1702.2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1702.3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2.4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1702.5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1702.6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1702.90 -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그 밖의 고체상태의 당류(糖類 : sugars)·당 시럽과 인조 꿀과 캐러멜을 분류한다.

(A) 그 밖의 당류(糖類)

이 부분에는 당류(糖類)로서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고체상태(가루 상태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제1701호**에 해당되는 당류(糖類)와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은 **제외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당류(糖類)는 다음과 같다.

(1) **유당(乳糖)(lactose, milk sugar로 알려진 것)(C₁₂H₂₂O₁₁)**. 이것은 밀크 중에 존재하며 상업적으로는 유장(乳漿 : whey)에서 제조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 : lactose)과 상업적 순도의 유당(乳糖)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나타낸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를 초과하여야 한다. 유당(乳糖)의 함유량 비율 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dry matter)”란 자유수(free water)와 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둘 모두 제거된 것을 말한다. 유장(乳漿)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나타낸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0404호**).

상관례상의 정제 유당(乳糖)은 백색인 약간의 단맛을 갖고 있는 결정성 분말이며,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은 무수(anhydrous)의 것이든 수화(hydrated)의 것이든 색깔없는 단단한 결정이며 냄새를 흡수한다.

유당(乳糖)은 유아식의 제조에서 밀크와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제과용·잼의 제조용이나 의약품에 사용한다.

- (2) **전화당(轉化糖 : invert sugar)** : 천연 꿀의 주요 성분이다. 보통 상거래 관례상으로는 정제된 자당(蔗糖) 용액을 가수분해하여 얻으며 중량 기준으로 같은 비율의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B)부분 참조]. 고체나 점착성 시럽의 형태로 제시하는데, 의약품 · 제빵 · 과실보존제 제조 · 인조 꿀과 양조공업 등에 사용한다.
- (3) **포도당(glucose)** : 천연적으로 과실과 벌꿀에서 생긴다. 이것은 같은 양의 과당과 함께 전화당을 구성한다.

이 호에는 텍스트로스(화학적으로 순수한 포도당)와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을 포함한다.

텍스트로스($C_6H_{12}O_6$)는 백색의 결정상의 가루로서 식료품 공업과 의약품 공업에 사용한다.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은 전분을 산(酸)과/또는 효소(enzyme)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다. 이것은 항상 텍스트로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율의 이당류 · 삼당류와 그 밖의 다당류(맥아당 · 말토트리오스 등)를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건조물 상태의 텍스트로스로서 표시한 환원당(reducing sugar)의 함유량이 20% 이상이다. 이것은 보통 무색의 다소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 [포도당시럽 · (B)부분 참조]이거나 덩어리 모양이나 케이크 모양(포도당 응집체)이거나 무정형의 가루이다. 이것은 주로 식료품공업 · 양조공업 · 담배 발효공업과 의약품공업에 사용한다.

- (4) **과당(fructose)($C_6H_{12}O_6$)** : 감미가 있는 과실과 벌꿀에 포도당과 함께 다량으로 존재한다. 상관례상으로는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예: 콘 시럽)이나 자당(sucrose)에서 생산되거나 달리아(dahlia)나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의 괴경(塊莖)에 주로 함유된 물질인 이눌린(inulin)을 가수분해하여 얻으며, 이는 백색 결정성 가루나 점착성 시럽이며[(B)부분 참조], 보통의 당[자당(蔗糖)]보다 감미가 있고 특히 당뇨병환자가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과 상업적 순도의 과당을 분류한다.
- (5) **자당(蔗糖)(sucrose sugar)** : 사탕무와 사탕수수를 제외한 원료에서 얻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캐나다와 미국 북동지방에서 성장되는 여러 가지의 단풍나무(주로 *Acer saccharum*과 *Acer nigrum*)의 수액에서 얻어진 **단풍당**이다. 이 수액은 보통 그 당의 독특한 향미를 갖도록 해주는 특성의 비당(非糖) 성분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제하지 않은 채로 농축하여 결정화한다. 또한 시럽형태로 시판되며[(B)부분 참조], 그 밖의 자당(蔗糖) 시럽[(B)부분 참조]은 감미 수수(*Sorghum vulgare var. saccharatum*) · 캐롭콩(carob bean) · 특성의 팜 나무 등에서 얻는다.
- (6) **말토크스트린(malto-dextrin 또는 dextri-maltose)** :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다. 이들은 맥아당(maltose)과 다당류(polysaccharide)를 여러 가지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가수분해의 정도가 낮으며, 따라서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보다 환원당의 함유량이 낮다. 이 호에는 오직 건조 상태의 텍스트로스로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그러나 20% 미만) 물품을 포함한다. 10% 이하의 환원당을 함유하는 것은 **제3505호**에 해당한다. 말토크스트린은 일반적으로 백색의 가루이나, 이들은 시럽 형태[(B)부분 참조]로 시판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유아식품과 저칼로리의 식이요법용 식품의 제조에 있어서 향미물질이나 식품착색제의 증량제(增量劑 : extender)로 사용하며 또한 의약품제조업에 있어서 캐리어(carrier)로도 사용한다.

(7) **맥아당(maltose)**($C_{12}H_{22}O_{11}$) :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며, 백색 결정성 분말로써 양조공업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과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을 분류한다.

(B) 당시럽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제2940호)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을 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106호 해설 참조).

위의 (A)부분에 규정한 당시럽[즉, 자당(蔗糖) 시럽은 물론 포도당(전분)시럽·과당시럽·말토덱스트린시럽·전화당시럽]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단일 시럽(simple syrup)**. 이 류의 당을 물에 녹여 얻는다.
- (2) 사탕무나 사탕수수 등에서 당류를 추출할 때 얻은 **즙(juice)과 시럽**. 이는 펙틴·알부민계 물질·무기염 등의 불순물이 함유될 때도 있다.
- (3) **황색 시럽(golden syrup)**. 자당(蔗糖)과 전화당(轉化糖)을 함유한 식탁용이나 요리용의 시럽이다. 황색시럽은 당정제 공정 중 정제당을 결정화하여 분리한 후 잔유한 시럽이나 사탕무나 사탕수수 중에 자당(蔗糖)의 일부를 전화하거나 전화당(轉化糖)을 첨가하여 얻는다.

(C) 인조꿀

“인조꿀(artificial honey)”은 자당(蔗糖)·포도당이나 전화당(轉化糖)을 기본 재료로 한 천연 꿀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

(D) 캐러멜

캐러멜(caramel)은 방향(芳香)을 지닌 갈색의 비결정성 물질이며, 다소 시럽같은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루이다.

캐러멜은 당류[일반적으로 포도당이나 자당(蔗糖)]나 당밀을 섭씨 120도부터 180도까지의 온도로 다소 장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여 얻어진다.

제조과정에 따라, 건조물로 계산한 당의 함유량이 일반적으로 높은(90% 정도) **캐러멜화당**(또는 캐러멜화당밀)에서 당의 함유량이 아주 낮은 “**착색용**” **캐러멜(colouring caramel)**까지 일련의 물품이 얻어진다.

캐러멜화당이나 캐러멜화당밀은 특히 감미로운 디저트·아이스크림과 과자류(pastry-cooks' product)의 제조에 있어서 향미료로 사용한다. 착색용 캐러멜은 당의 상당한 정도가 멜라노이딘(melanoidin)(색소의 일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스킷 제조용의 착색물질·양조용의 착색물질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조용의 착색물질로 사용한다.

17.03 -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1703.90 - 기타

이 호의 당밀(糖蜜 : molasses)은 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만 얻어진다. 흔히 이것은 사탕수수당(cane sugar)이나 사탕무당(beet sugar)을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기거나 옥수수에서 과당(fructose)을 생산한 결과로서 생기는 정상적인 부산물로서 얻어진다. 이는 쉽게 결정화할 수 없는 상당량의 당(糖)을 함유하는 점질성 물질로서 갈색이나 흑색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루일 수도 있다.

사탕무당의 당밀(糖蜜)은 일반적으로는 식용에 적합치 않으나 사탕수수당(cane sugar) 당밀과 옥수수 당밀의 정제된 특정 형태의 것은 식용에 적합하여 트리클(treacle)이나 식탁용 시럽(table syrup)으로 판매한다. 당밀(糖蜜)은 알코올과 알코올성 음료의 증류 원료[예: 사탕수수당의 당밀에서 럼(rum)주 제조]와 가축용 사료와 커피 대용물로 사용하며, 때로는 당(糖)을 추출하는데도 사용한다.

이 호의 당밀은 탈색한 것·착색한 것이나 향미물질을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소호해설]

소호 제1703.10호

사탕수수 당밀(糖蜜)은 냄새와 화학적 조성에 의해서 제1703호의 그 밖의 당밀(糖蜜)과 구별할 수 있다.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704.90 - 기타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

이들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설탕을 함유한 껌(가당한 추잉껌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2) 끓인 단 과자(boiled sweets)(맥아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캐러멜 과자·구중향정(cachou)·캔디·누가(nougat)·풍당(fondant)·가당한 아몬드·터키 딜라이트(Turkish delight)
- (4) 마지판(marzipan)
- (5) 인후용 정제(throat pastille)나 코프 드롭프스(cough drops)로 포장된 조제품 : 설탕(젤라틴·전분이나 곡물 가루와 같은 식품을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과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agents)[벤질알코올·박하(menthol)·유우칼리프톨(eucalyptol)과 톨루발삼(tolu balsam) 등과 같이 의약의 성질을 갖는 물품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것. 단, 의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향미제(香味劑)를 제외한다]을 함유하고 있는 인후용 정제나 코프 드롭프스는 그 정제나 드롭프스(drops) 중에 함유된 비율이 해당 물질 치료나 예방의 용도에 적합한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제30류**에 해당된다.
- (6) 설탕·코코아 버터·분유와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 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코코아 버터(cocoa butter)는 코코아로 간주하지 않는다]
- (7) 자당(蔗糖 : sucr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감초 추출물[케이크 모양·블록 모양·스틱 모양·정제(pastille) 모양 등]. 그러나 과자로 만든(즉, 조제된) 감초 추출물은 설탕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8) 설탕 과자의 모양으로 만든 과실 젤리와 과실 페이스트
- (9)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한 페이스트(paste)(지방을 소량 첨가하거나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것)로서, 직접 이 호의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 적합하지만, 이 호나 다른 호의 물품에 대한 충전제(filling)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예:
 - (a) 풍당 페이스트(fondant paste) : 자당(蔗糖)이나 자당(蔗糖) 시럽으로 조제한 것·포도당 시럽으로 조제한 것·전화당(轉化糖) 시럽으로 조제한 것(향미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풍당(fondants)의 조제와 단과자나 초콜릿의 충전제로 사용한다.
 - (b) 누가 페이스트(nougat paste) : 설탕·물과 콜로이드성의 물질(예: 알의 흰자위)의 혼합물(소량의 지방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을 탄산가스 등으로 불려 만든 것으로서(견과류·과실이나 그 밖의 적당한 식물성 물품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누가(nougat)의 제조나 초콜릿의 충전제로 사용한다.
 - (c) 아몬드와 설탕을 주 원료로 하여 조제된 아몬드 페이스트 : 주로 마지판(marzipan) 제조에 쓰인다.
- (10) 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설탕과자의 형태로 만든 것[예: “할바(halva)”]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자당(蔗糖 : sucr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 이하인 감초 추출물(과자로 조제된 것은 제외한다) (**제1302호**)
 - (b)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 조제품(**제1806호**)(이 경우에는 코코아 버터는 코코아로 간주하지 않는다)
 - (c) 단맛을 가미한 조제식품[예: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과실 껍질(**제2006호**)과 잼·과실 젤리 등(**제2007호**)]
 - (d) 단과자(sweets)·검(gum)과 이와 유사한 물품(특히 당뇨병 환자용)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를 사용한 것 ;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분을 상당한 비율로 함유하고 때로는 밀크나 견과류를 포함하며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기에 부적합한 물품 (**제2106호**)
 - (e) **제30류**의 의약품
-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소시지·육·설육(脛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품(제16류)
 - 나. 제0403호·제1901호·제1902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총설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두를 포함한다),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제0403호**의 요구르트(yogurt)와 그 밖의 물품
- (b) 백색 초콜릿(**제1704호**)
- (c) 고운 가루(flour)·부순 알곡(groat)·거친 가루(meal)·전분(starch)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식품[완전히 탈지(脫脂: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의 것]과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품[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미만의 것](**제1901호**)
- (d)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은 곡물(**제1904호**)
- (e) 페이스트리(pastry)·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1905호**)
- (f)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식용의 빙과류로서 코코아를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하고 있는 것(**제2105호**)
- (g)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의 음료(예: "crème de cacao")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제22류**)
- (h) 의약품(**제3003호**나 **제3004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alkaloid)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제외한다(제2939호)**.

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코코아두(cocoa bean)는 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의 과실(cocoa-pod) 중에 다수(25개~80개)로 들어 있는 종자이다. 코코아두는 납작한 알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자색이나 적색이다. 이는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껍데기(shell)와 매우 얇은 백색 내부 껍질(inner husk)이나 핵(核 : kernel)을 피복한 껍질(skin)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부분으로 분할되는 것이다.

약간 쓴 맛을 감소시키고 방향(芳香)을 증진시키고 껍데기를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두(bean)를 발효시킨다 ; 발효시키는 대신에 증기 처리하여 건조할 수 있다. 껍데기를 용이하게 제거하고 그 핵을 분말화하고 제품을 농축하고 향미(香味)와 방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볶는다. 볶은 두(bean)는 물결 모양의 롤러(corrugated roller)를 통하여 과쇄하고 씨눈(germ)을 분리하고 다음에 껍데기와 껍질·씨눈을 핵을 부순 조각(cocoa nib)으로부터 분리하는 공정을 거친다.

이 호에는 생 것이나 볶은 두로서 원형의 것[껍데기와 껍질(shell·husk and skin)이나 씨눈(germ)을 분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부순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껍데기·껍질과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제1802호**)
- (b) 코코아두를 갈은 페이스트(paste)(**제1803호**)

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이 호에는 코코아 분말이나 코코아 버터를 제조할 때 생긴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한다. 이 잔유물의 일부는 코코아 버터를 더 추출하는데 사용하고 이들 모두는 테오브로민(theobromine)의 추출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물사료에 소량이 첨가될 수 있다. 잘게 부순 것은 향미(香味)는 다르나 냄새는 코코아와 유사하며 코코아 가루 대용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껍데기와 껍질(shell, husk and skin)** : 두(bean)를 볶고 부수는 공정에서 분리한다. 이들은 소량의 핵의 파편(껍데기와 껍질에 붙어 있어 용이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코코아 버터를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다.
- (2) **코코아의 씨눈(germ)** : 이것은 코코아두를 소위 씨눈제거기(de-germing machine)에 통과시켜서 얻는다. 이것들은 거의 지방을 함유하지 않는다.
- (3) 선별기에서 껍데기(shell)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코코아 더스트(dust)** : 보통 이들의 지방 함유량은 추출하기에 경제적으로 합당할 정도로 충분하다.
- (4) **코코아 케이크**[핵의 조각을 함유하는 껍데기와 껍질의 웨이스트(waste)나 원형의 두(whole bean)에서 코코아 버터를 추출한 후 남은 잔유물] : 이 케이크는 껍데기와 껍질의 미립자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코코아 가루(powder)나 초콜릿의 제조에 부적당하다.

이 호에서는 코코아 페이스트(paste)에서 코코아 버터를 추출한 결과인, 껍데기와 껍질이 없는 코코아케이크를 제외한다(제1803호).

18.03 -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1803.2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볶은 코코아두[껍데기와 껍질(shell, husk and skin)과 씨눈(germs)를 제거한 것]를 가열한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원판 파쇄기(disc crusher)로 잘게 부수어 얻는다. 이 물품은 태블릿(tablet) 모양·덩어리 모양·블록 모양으로 응고된다. 이 페이스트(paste)는 이 상태로 과자제조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보통 코코아 버터·코코아 가루와 초콜릿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일부나 전부 탈지(脫脂)한 페이스트(paste)를 분류하며(코코아 케이크), 이는 코코아 가루나 초콜릿 제조에 사용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테오브로민(theobromine)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코코아 페이스트(cocoa paste)를 **제외한다(제1806호)**.

18.04 -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

코코아 버터(cocoa butter)는 코코아두에 함유된 지방 물질로서, 보통 코코아 페이스트(paste)나 원형의 두(whole bean)를 열간압착하여 얻는다. 또한 하급품은 흔히 코코아 지방(脂)이라고 불리는데, 상한 코코아두나 여러 가지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껍데기·껍질·더스트(dust) 등]를 압착하거나 적당한 용제(solvent)로 추출하여 얻는다.

코코아 버터는 보통 실온(室溫)에서 고체이며 약간 기름 상태로서 황백색이다. 이는 코코아와 유사한 냄새가 나며 유쾌한 향미(香味: flavour)가 있다. 보통 슬래브(slab) 모양으로 제시하는데 초콜릿 제조[코코아 페이스트(paste)를 강화]·과자의 제조[특정 단과자(sweets)를 조제하기 위하여]·향료[냉침법(冷浸法)에 의한 향료 추출]·화장품류와 의료용품[연고(ointment)·좌약(suppository)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18.05 -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코코아 가루(cocoa powder)는 제1803호에서 설명된 코코아 페이스트(paste)를 부분적으로 탈지(脫脂 : defatted)하고 가루화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코코아 가루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니브(nib)·페이스트(paste)·가루를 그것의 용해도(solubility)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알칼리 물질(탄산나트륨·탄산칼륨 등)로 처리하여 얻은 코코아 가루(가용성 코코아)를 포함한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와 분유나 펩톤을 첨가한 코코아 가루는 **제1806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약품 안에 들어 있는 코코아 가루가 단지 의약품의 지지물(support)이나 매체(vehicle)로 인정되는 것은 **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한다.

18.06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06.20 -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1806.32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1806.90 - 기타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커피·헤즐넛·아몬드·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슬래브(slab) 모양·태블릿(tablet) 모양·막대(bar) 모양·정제(pastille)·크로켓(croquette)·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또한 비타민으로 강화한 초콜릿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다음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a) 백색초콜릿(코코아 버터·설탕·분유로 조성)(제1704호)

(b)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제1905호)



[소호해설]

소호 제1806.20호

“그 밖의 벌크 형태(other bulk form)”로 제시되는 물품은 펠릿(pellet)·콩 모양(bean)·둥근 모양(round)·볼(ball)·칩(chip)·플레이크(flake)·잘게 흩뿌려진 모양(sprinkle)·부스러기 모양(shavings)이나 이와 비슷한 모양인 경우에는 제1806.20호에 분류한다. 이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보통 초콜릿 제품·베이커리 제품·과자·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호 제1806.31호

이 소호에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filled)”이란 속을 예를 들면, 크림·크리스티드슈가·말린 코코넛·과실·과실 페이스트(paste)·리큐르(liqueur)·마지판(marzipan)·견과류·누가(nougat)·캐러멜이나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슬래브나 막대를 포함한다. 그러나 초콜릿 전체에 곡물·과실이나 견과류(조각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이 박혀 있는 고체 형태의 초콜릿 블록·슬래브나 막대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19 류

곡물 · 고운 가루 · 전분 ·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 나. 사료용 비스킷과 그 밖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조제 사료(제2309호)
 -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약품
2. 제1901호에서
 - 가.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한다.
 - 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다음을 말한다.
 -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 · 곡물의 거친 가루
 -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는 제외한다]
3.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 곡물이나 그 밖의 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가루(곡물의 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전분, 과일이나 채소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가루)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고운 가루 · 거친 가루나 그 밖의 곡물의 생산품을 함유하지 않아도 베이커리 제품과 비스킷은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3호와 제1901호에서 코코아 제품 중 코코아의 함유량은 보통 테오브로민(theobromine)과 카페인(caffeine)의 함유량을 합한 것에 팩터 31을 곱하여 계산한다. “코코아(cocoa)”에는 페이스트(paste)나 고체 모양을 포함한 모든 모양의 코코아를 분류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소시지·육(肉)·설육(脣肉)·피(blood)·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들의 배합물을 전 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품(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은 제외한다)(제16류)
 - (b) 완전히 탈지(脫脂 :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이상인 고운 가루·부순 알곡(groats)·거친 가루·전분(starch)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식품과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의 조제식품(제1806호)
 - (c) 커피를 함유(함유량에 관계없다)하는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과 그 밖의 커피 대용물(예: 볶은 보리)(제2101호)
 - (d) 카스터드(custard)·디저트(dessert)·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가루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맥아 추출물이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제품(보통 제2106호)
 - (e)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히 동물용 사료로 조제한 것(예: 개용 비스킷)(제2309호)
 - (f) 제30류에 분류하는 의약품과 그 밖의 물품
-

19.01 -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1901.90 - 기타

(I) 맥아 추출물(malt extract)

맥아 추출물은 맥아(malt)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

이들은 블록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지 다소 점착성 액체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 추출물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들이 **제30류**의 의약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맥아 추출물은 육아식·식이요법·요리나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조제에 사용한다. 또한 점착성 맥아 추출물은 더 조제하지 않고 베이킹용이나 섬유공업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제1704호**의 설탕 과자(맥아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
- (b) 맥아를 기본 재료로 한 맥주와 그 밖의 음료[예: 말톤(malton)](**제22류**)
- (c) 맥아 효소(**제3507호**)

(II)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 코코아를 첨가하는 경우 완전히 탈지(脫脂: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류 총설 참조).

그러나 소시지·육(肉)·설육(脣肉)·피·곤충·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어떤 배합물이 전 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은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6류**).

이 호에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고운 가루(flour)”와 “거친 가루(meal)”란 제11류의 곡물 가루나 거친 가루뿐만 아니라 그 밖의 류에 해당하는 대두의 가루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를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제0712호)·감자의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제1105호)·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제1106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 (B) “전분(starch)”이란 변질화되지 않은(untransformed) 전분과 프리젤라틴화(pre-gelatinised)하거나 가용화(solubilised)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된 것[예: 텍스트리말토스(dextrin-maltose)]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가루(powder)·알갱이(granule)·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나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끓은 죽·영유아(infant)용이나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 푸딩, 커스터드(custard)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품을 분류한다.

- (1) 가당 밀크와 고운 가루(flour)를 혼합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고운 가루(flour)
- (2) 알(egg) 가루·밀크 가루·맥아 추출물(malt extract)와 코코아의 고운 가루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 조제품
- (3) 쌀의 고운 가루·여러 가지 전분(starches)·스위트 에이콘(sweet acorn)의 고운 가루·설탕과 코코아가루의 조제품으로서 바닐라 향미를 부여한 조제식료품인 “라카우(racahout)”
- (4) 곡물의 고운 가루에 과실의 고운 가루를 혼합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것이나 과실 가루에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조제품
- (5) 맥아 밀크(malted milk)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분유(powdered milk)와 맥아추출물(malt extract)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가당했는지에 상관없다]
- (6) “크너델(Knödel)”·“클뢰세(Klöße)”·“녹켈른(Nockerln)”(그 구성성분이 세몰리나·곡물의 고운 가루·빵부스러기·지방·설탕·알·양념·효모·잼이나 과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감자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이와 같은 물품은 제20류에 분류한다.
- (7)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지방·알이나 과실을 미리 혼합하여 만든 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 것이나 최종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
- (8) 치즈·토마토·기름·육류(meat)·멸치 등과 같은 다양한 원료가 덮인 피자 반죽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되지 않은 피자. 그러나 사전조리되었거나 조리된 피자는 제1905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물품 이외에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제1101호나 제1102호**에 속하는 자동부풀림성 고운 가루와 “팽창성(swelling)“ 가루[프리젤라틴화(pregelatinised)한 것]
- (b) 곡물의 고운 가루를 혼합한 것(**제1101호나 제1102호**)과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혼합한 것과 과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포함한 것(**제1106호**)으로서 달리 조제되지 않은 것
- (c) **제1902호**의 파스타와 쿠스쿠스(couscous)
- (d) 타피오카(tapioca)와 그 대용물(**제1903호**)
- (e) 전부나 일부를 조리한 베이커리 제품(후자의 것은 먹기 전에 좀 더 요리가 필요하다)(**제1905호**)
- (f)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제2103호**)
- (g)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제2104호**)
- (h) 텍스처화한 식물성의 단백질 물품(**제2106호**)
- (ij) **제22류**의 음료

(Ⅲ)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어린이(infant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 (2) 다른 물질[예: 올레 지방(oleic fat)]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예: 부티르 지방(butyric fat)]를 대체함으로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설탕과자의 특성을 갖는 물품(**제1704호**)과 완전히 탈지(脫脂 :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물품(이 류 총설 참조)(**제1806호**)과 **음료(제22류)**를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이나 기본 재료(예: 고운 가루)를 분류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식용의 빙과류(edible ice)는 **제외한다(제2105호)**.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 -- 새의 알을 넣은 것

1902.19 -- 기타

1902.2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30 - 그 밖의 파스타

1902.40 - 쿠스쿠스(couscous)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semolina)나, 밀·옥수수·쌀·감자 등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채소주스·퓨레·계란·밀크·글루텐(gluten)·디아스타아제(diastrase)·비타민·착색제·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눌러서 자르기·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튜브·스트립·필라멘트·조가비·구슬·알갱이·별·팔꿈치형·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모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 물품은 보통 수송·저장과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 출하 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신선한 뇨키(gnocchi)와 냉동한 라비올리(ravioli) 같은 건조하지 않은 것(즉, 축축한 것이나 신선한 것)과 냉동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肉)·어류·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소스·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라비올리(ravioli)]·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cannelloni)]나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라자니아(lasagne)]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쿠스쿠스(couscous)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세몰리나(semolina)를 열처리한 것이다. 이 호의 쿠스쿠스는 조리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예: 같은 이름을 갖는 완성된 요리가 되도록 육(肉)·채소와 그 밖의 성분으로 조합한 것)한 것일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脣肉)·피(blood)·곤충·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속을 채운 파스타는 제외한다)(**제16류**)
- (b)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파스타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2104호**)

19.03 -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 · 낱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 모양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매니옥 전분(manioc starch)(타피오카) · 사고전분(사고) · 감자전분(파리노카 · 감자 타피오카 · 감자사고)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전분[좁뿌리 · 살렘(salep) · 유카(yucca) 등]에서 조제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전분(starch)은 물과 혼합하여 걸쭉한 페이스트(paste) 모양으로 하여 스트레이너(strainer : 여과기)나 작은 구멍을 낸 판을 통하여 섭씨 120℃ ~ 150℃로 가열한 철판 위에 방울로 낙하시킨다. 이 방울은 작은 펠릿(pellet)이나 플레이크(flake)를 형성한다(때로는 부순 것이나 알갱이 모양으로 될 때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분 페이스트를 증기로 가열한 용기 중에서 응고시킨다.

이 물품은 플레이크(flake) 모양 · 낱알(grain)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siftings) 모양 · 종자(seed)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상태로 판매되며 수프 · 푸딩이나 다이어트식품 조제에 사용한다.

19.04 -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1904.20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1904.30 - 불거 밀(bulgur wheat)

1904.90 - 기타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밀크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과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

또한 이 그룹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

콘 플레이크(corn flake)는 옥수수의 낱알을 껍질(pericarp)과 씨눈(germ)을 제거시키고 설탕·식염·맥아 추출물을 가하고 증기로 부드럽게 한 후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롤링(rolling)하고 회전노(rotary oven) 중에서 볶아서 만든다. 이 같은 공정은 밀이나 그 밖의 곡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팽창(puffed)” 쌀과 “팽창” 밀도 이 그룹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 공기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낱알을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

더욱이 이 그룹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리(savoury) 식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습한 곡물 알갱이(grain)(원래 모양이나 조각 상태의 것)에 대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열처리를 한 후, 연속해서 식물 기름·치즈·이스트 추출물·소금과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을 뿌려서 얻어진다. 반죽(dough)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1905호).

(B)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이 그룹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인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 식료품[가끔 “무슬리(müsli)”로 불리워진다]는 견과과실·견과류·설탕·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한다.

(C) 불거 밀(bulgur wheat)

이 그룹에는 불거 밀(bulgur wheat)로서 가공한 곡물 알갱이 모양의 것[단단한 밀알을 조리하여 건조시켜 껍질을 벗기고 잘게 부수어 거칠게 가루로 만든 뒤 마지막으로 알이 굵은 불거 밀과 알이 작은 불거 밀을 체에 쳐서 얻는다]을 포함한다. 불거 밀은 완전한 낱알 모양이라도 무방하다.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분~12분 동안 끓여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나 조미료와 같은 그 밖의 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하는데, 다만, 이러한 그 밖의 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물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이 호에서는 **제10류**나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이나 처리를 한 곡물 낱알(cereal grains)은 **제외한다**.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설탕과자로서의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비율로 설탕을 입힌 것이나 설탕을 함유한 조제 곡물(**제1704호**)
- (b)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6%를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제1806호**)
- (c) 조제한 식용의 옥수수 속대(cob)와 알갱이(grain)(**제20류**)

19.05 -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 귀리빵

1905.20 -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1905.31 -- 스위트 비스킷

1905.32 -- 와플과 웨이퍼

1905.40 - 러스크(rusk) · 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1905.90 - 기타

(A)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 · 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 · 전분 · 채두류(菜豆類)의 가루 ·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 · 양귀비 · 캐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 · 설탕 · 꿀 · 계란 · 지방 · 치즈 · 과일 ·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 · 육(肉) · 어류 · 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베이커리 “개량제(improver)”는 주로 반죽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발효를 촉진시키며, 제품의 특성과 외관을 개량하며, 보다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나 가루를 기본재료로 한 반죽(dough)으로 만든 제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보통의 빵** : 흔히 곡물 가루 · 효모와 소금만을 함유하고 있는 것

(2) **글루텐(gluten) 빵** : 당뇨병 환자용의 것

(3) **효모를 사용하지 않은 빵**이나 마초(matzo)

(4) **크리스프브레드(knäckebrot라고도 한다)** : 이것은 얇은 직사각형이나 둥근 구멍을 뚫은 조각형태의 건조한 바삭바삭 빵이다. 크리스프브레드(Crispbread)는 호밀 · 귀리 · 보리나 밀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부순 알곡이나 기울을 빼지 않은 가루를 반죽으로 해서 효모(yeast) · 누룩반죽(sour dough) · 그 밖의 발효제(leavening agents)나 압축공기에 의해서 발효시켜 부풀린 것에서 만들어진다. 물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5) **러스크(rusk) · 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 이것은 얇게 자르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와 버터나 그 밖의 지방 · 설탕 · 계란이나 그 밖의 영양물질을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

- (6)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흔히 탄성이 있는 스펀지 모양 제품이며, 호밀가루·밀가루·감미료(예: 벌꿀·포도당·전화당·정제 당밀)·향미료나 향신료로 제조되는데 알의 노른자위(egg yolk)나 과실을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형태의 생강과자(gingerbread)는 지방과 코코아의 조제품으로 만든 초콜릿이나 아이싱(icing)으로 표면을 덮은 것도 있다. 설탕을 함유하고 있거나 설탕을 입힌 형태의 것도 있다.
- (7) **“프레젤(pretzel)”** : 이것은 부서지기 쉽고 매끈매끈하며 소금을 첨가한 크래커(cracker)로서 흔히 원기둥 모양의 가루반죽을 “B”자 모양이 되도록 꼬아서 만든 것이다.
- (8) **비스킷** :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항목(10)에서 설명된 설탕이나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스킷도 포함한다.
- (a) **보통 비스킷(plain biscuit)** : 이것은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크림 크래커(cream cracker)와 물 비스킷(water biscuit)을 포함한다.
- (b)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며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아몬드·헤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상업용 비스킷은 보통 충전하지 않으나 그것들은 때때로 고체나 그 밖의 충전물(설탕·식물성 지방·초콜릿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
- (c) **짭짤한 맛의 비스킷(savoury biscuit)과 가염 비스킷(salted biscuit)** : 이것은 보통 낮은 자당(蔗糖) 성분을 가지고 있다.
- (9) **와플과 웨이퍼(wafer)** : 이것은 본을 떠서 만든 금속판들 사이에서 구워서 만든 딱딱하지 않은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것의 범주에는 얇은 와플제품(롤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둘 이상의 층이나 얇은 와플 페이스트리 사이에 맛있는 충전제를 채운 것으로 구성된 와플과 특수한 기계[예: 아이스크림 코오넷(ice cream cornet)]를 통해서 와플반죽을 밀어내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여 있기도 하다. 웨이퍼(wafer)는 와플과 유사한 제품이다.
- (1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고운 가루·전분류·버터나 그 밖의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肉)·어류·향미료·효모(yeast)나 그 밖의 팽창제(leavening agent)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다.
- (11) **곡물가루를 넣지 않고 만든 특정 베이커리제품**[예: 새의 알의 흰자위와 설탕으로 만든 머링그(meringue)]
- (12) **크레이프(crêpe)와 팬케이크**

- (13) **케셰(quette)** : 이것은 페이스트리(pastry) 껍질과 여러 가지 성분[예: 치즈·알·크림·버터·소금·후추·육두구(肉荳蔻)와, "케셰 로레인(quette lorraine)"의 경우에는, 베이컨이나 햄]으로 만든 충전물로 구성한다.
- (14) **피자**(사전 조리된 것이나 조리된 것) : 이것은 치즈·토마토·기름·육(肉)·멸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성분으로 겉을 덮은 빵반죽으로 구성한다. 단, 굽지 않은 pizza는 제1901호에 분류한다.
-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을 제외한다.

- (a)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곤충·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예: 페이스트리에 육을 넣어 만든 파이)(제16류)
- (b) 제2005호의 물품

(B)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곡물 가루나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이나 시트 모양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을 분류하며 이는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성찬용 웨이퍼(communion wafer) : 극히 순수한 밀가루 페이스트(paste)를 철판 사이에 넣어 조리하여 제조한 얇은 원판 모양의 것이다.

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 : 곡물 가루나 전분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적고 얇은 컵 모양이며 한 쌍을 합쳐서 한 개의 용기로 만들어져 있다.

실링 웨이퍼(sealing wafer) : 굵고 건조하고 때로는 색을 부여한 페이스트로 된 얇은 시트를 절단한 것이며 또한 이는 접착성 물질을 함유할 때도 있다.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 : 곡물 가루나 전분 페이스트(paste)를 굵고 건조한 얇은 시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누가(nougat) 등의 과자류의 피복에 사용한다. 이것은 특정 팜나무의 심(pith)을 얇게 베어서 만든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와는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제1404호 해설서 참조).

제 20 류

채소 · 과실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7류 · 제8류 · 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
 - 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제15류)
 - 다. 소시지·육·설육(脞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 라. 베이커리 제품과 그 밖의 제1905호의 제품
 - 마.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 제2007호와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나 초콜릿과자(제1806호) 모양인 과실젤리 · 과실 페이스트(paste) · 설탕을 입힌 아몬드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3. 제2001호 · 제2004호 ·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 · 제1106호(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
4.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제2002호로 분류한다.
5.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6.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주스”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 제2호 참조).



소호주:

1. 소호 제 2005.10 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 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 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이들 조제품에는 채소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의 소량으로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 2005 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소호 제 2007.10 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 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이들 조제품에는 과실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의 소량으로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 2007 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3.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 “브릭스(Brix) 값”이란 브릭스(Brix) 관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관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糖)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관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나 섭씨 20℃가 아니라면 섭씨 20℃로 보정(補正)한 상태에서 측정된 값을 말한다).

국내주: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2)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
- (3) 잼·과실 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푸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 (4)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 (5)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발효하지도 않고 알코올을 첨가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6)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7) 제7류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나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
- (8)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이들 물품에는 원래 모양, 조각으로 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
- (b) 페이스트리(pastry)로 만든 과실 타르트(fruit tart)와 같은 물품(**제1905호**)
- (c) **제2104호**의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
- (d)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제22류**)

20.01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 오이류

2001.90 - 기타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그 밖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벌크(통과 드럼 등에 넣은)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향아리·병·통조림이나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피클[pickle(소금물에 절인 채소)]·머스타드 피클[mustard pickle(겨자물에 절인 채소)] 등으로 알려진 어떤 특정 조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제2103호**에 해당되는 소스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즉 소스는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액체·에멀전(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이다.

이 호에 설명한 방법으로 보존처리된 채소와 과실의 중요한 것은 오이류·양파·샬롯(shallot)·토마토·꽃양배추·올리브·케이퍼(caper)·스위트콘·아티초크 허트(artichoke heart)·팜 허트(palm heart)·얌(yam)·호두와 망고 등이 있다.

20.02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2002.90 - 기타

이 호에는 전체이거나 조각인지에 상관없이 토마토를 분류한다[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는 **제외한다**].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균질화 토마토[예: 토마토 퓨레·토마토 페이스트(paste)나 토마토 농축액]와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 주스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제2103호**)·토마토 수프와 그 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은 **제외한다**.

20.03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2003.90 - 기타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01호)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모든 버섯(줄기 포함)과 송로(松露 : truffle)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원래 모양·조각 모양(예: 슬라이스한 것)이나 균질화한 것일 수도 있다.

20.04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 감자

2004.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는,

- (1) 기름에 조리하거나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이나 프렌치 프라이(French fry)]**
- (2) **냉동한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grains) 모양인 것]·**당근**·**완두 등** : 사전 조리했는지에는 상관없으며,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밀폐용기(예: 플라스틱 백)에 포장한 것
- (3) 감자의 고운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크너델(Knödel)”**·**“클뢰세(Klöße)”**·**“녹겔른(Nockerln)”**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2005.10 - 균질화한 채소
- 2005.20 - 감자
- 2005.4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콩[비그나(*Vigna*)속 · 파세러스(*Phaseolus*)속]
- 2005.51 -- 꼬투리를 벗긴 콩
- 2005.59 -- 기타
-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 2005.70 - 올리브
-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 2005.91 -- 죽순
- 2005.99 -- 기타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원래 모양·조각 모양이나 잘게 부순 이들 조제품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샐러드).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올리브** :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오래 침지(浸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 (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보존처리한 것은 제0711호에 분류한다-제0711호 해설 참조)
- (2)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시켜 조제한 것
- (3)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grains) 모양인 것]·당근·완두 등**(사전 조리한 것이나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
- (4) **감자의 고운 가루**·소금과 소량의 글루탐산나트륨으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태블릿(tablet) 모양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텍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chips)”으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1905호**에 분류하는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b) **제2009호**의 채소주스
- (c)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채소주스(**제22류**)

20.06 -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 (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끓는점(boiling point)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설탕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당(糖)으로 보존처리한 물품의 주요한 것으로는 원형의 과실이나 견과류[체리·살구·배·서양오얏·밤(marrons glacés)·호두 등]·절단한 과실(오렌지·레몬·파인애플 등)·과실 껍질(시트론·레몬·오렌지·멜론 등)·식물의 그 밖의 부분(안젤리카·생강·암·고구마 등)와 꽃(오랑캐꽃·미모사 꽃 등)이 있다.

드레인한 물품(drained product) : 공기 중에서 노출시켜도 결정화되지 않는 시럽[예: 자당(蔗糖 : sucrose)의 일정 비율과 전화당(轉化糖)이나 포도당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이다. 침투된 후에 과잉의 시럽이 건조되어 나오면 감촉이 끈적끈적한 물품이 된다.

설탕을 입힌 물품(glacé product) : 드레인한 과실 등을 자당(蔗糖) 시럽에 침지하여 얻는데 건조하면 얇고 광택있는 피막이 생긴다.

설탕에 절인 물품(crystallised product) : 과실 등에 자당(蔗糖) 시럽을 침투시켜 얻는데, 건조하면 과실 등의 전체나 표면에 당의 결정이 생긴다.

당으로 보존처리한 후 시럽에 담긴 이들 물품은 포장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채소인 경우는 **제2002호·제2003호·제2005호**,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제2008호**(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

건조과실(예: 대추야자와 프룬)은 소량의 당을 첨가한 것이나 과실의 겉에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긴 당이 덮여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에 절인 과실과 외관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한다.

20.07 - 잼 · 과실젤리 · 마말레이드(marmalad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 균질화한 조제품

- 기타

2007.91 -- 감귤류의 과실

2007.99 -- 기타

잼(jam) : 원형의 과실 · 과실의 펄프 · 채소(예: 호박 · 가지)나 그 밖의 물품[예: 생강 · 장미꽃잎(rose petal)]에 같은 비율로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든다.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

마말레이드(marmalade) : 일반적으로 감귤류의 과실에서 제조된 잼의 변종이다.

과실젤리(fruit jelly) : 과즙(신선한 것이나 끓인 과실을 압착하여 나온 것)을 냉각시켜서 물품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끓여서 제조한다. 이것은 굳어지고 투명하며, 과실조각이 없어진 상태이다.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설탕은 첨가할 수도 있고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실 퓨레는 과실의 함유성분이 더 높고 비교적 연한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잼과 차이가 있다.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사과 · 마르멜로(quince) · 배 · 살구 · 아몬드 등] : 고체 상태이거나 거의 고체 농도가 되도록 퓨레(purée)를 증발시킨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보통 설탕으로 조제한 물품은 설탕 대용으로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감미를 낼 수도 있다.

이 호에는 균질화한 조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설탕과자나 초콜릿과자 모양의 젤리(jelly)와 페이스트(paste)(각각 **제1704호**나 **제1806호**)
- (b) 젤라틴(gelatin) · 설탕과 과실주스나 인조 과실 에센스(artificial fruit essence)으로 조제한 식탁용 젤리(**제2106호**)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 땅콩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008.20 - 파인애플

2008.30 - 감귤류 과실

2008.40 - 배

2008.50 - 살구

2008.60 - 체리

2008.70 -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2008.80 - 초분류 딸기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 팜 하트(palm heart)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008.97 -- 혼합물

2008.99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아몬드(almond)·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 (3) 물·시럽·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
-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살구·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
-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angelica)·암·고구마·홉순(hop shoot)·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 (8) 당(糖)시럽에 넣은 타마린드(tamarind) 열매의 껍지(pod)
-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
-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병(jar)이나 밀폐용기·통·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제0909호**나 **제2106호**).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香味: flavouring)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

20.09 -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오렌지주스

2009.11 -- 냉동한 것

2009.12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009.19 -- 기타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 주스

2009.2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009.29 -- 기타

-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009.39 -- 기타

- 파인애플주스

2009.4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009.49 -- 기타

2009.50 - 토마토주스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2009.69 -- 기타

- 사과주스

2009.7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009.79 -- 기타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채소 주스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09.89 -- 기타

2009.90 - 혼합 주스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주스에 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를 참조한다.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일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일과 채소를 압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개봉(開封)하여 얻는다. 이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extractor)”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와 감귤류의 경우)이나 냉수·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셀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 호의 주스에는 코코넛 워터도 포함한다.

이같이 얻은 액체는 보통 다음 공정으로 처리한다.

- (a) **청정(淸澄 : clarification)** : 청정제(젤라틴·알부민·규조토 등)나 효소, 원심분리 방법이나 한외여과(限外濾過 : ultrafiltration)에 의해 대부분의 고체 성분을 주스에서 제거하며, 한외여과(限外濾過) 공정은 물품의 살균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 (b) **여과(filtration)** : 키질구어(kieselguhr)·셀룰로오스 등으로 된 여과판으로 여과
- (c) **탈가스(de-aeration)** : 색소와 향미를 손상시키는 산소를 제거
- (d) **균질화(homogenisation)** : 다육질의 과일(토마토·복숭아 등)에서 얻은 특정 주스의 경우
- (e) **살균[sterilisation(발효방지를 위하여 살균)]** :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저온살균법(pasteurisation)(prolonged or “flash”)·진극을 부착시킨 기계에서 진기 살균법·여과에 의한 살균법·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압력 하에서의 저장법·냉동법·화학 살균법(예: 이산화황·안식향산 나트륨)·자외선이나 이온 교환체로 처리하는 방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처리에 의한 결과 얻어진 과일주스나 채소주스는 보통 투명하고 미발효된 액체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주스(특히 살구·복숭아·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일에서 얻은 것)는 여전히 과육의 부분들을 미세하게 부순 형태로 함유한다(현탁액이거나 침전물물).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일이라면 건조 과일에서 얻은 주스(실제로서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적다)도 포함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prune juice)”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실제 주스를 함유하지 않는 신선한 과일이나 건조 과일(예: 주니퍼의 열매·장미 열매)을 물 속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액체는 **제외하며**, 이 같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21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동결건조)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

어떤 농축주스는 브릭스값에 따라 그들의 농축하지 아니한 주스와 구별할 수 있다(이 류의 소호주 제3호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과일·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는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별도로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1) 설탕
- (2) 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 다만, 첨가된 양이 정상적인 감미 목적에 필요한 범위와 주스가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아래 항목(4)를 참조].
-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예: 이산화황·이산화탄소·효소)

(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주석산)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색소),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화 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소르비톨).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이 호의 채소주스는 소금(염화나트륨)·향신료나 향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상의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가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보다 많은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탄산가스를 함유한 과실·견과류 주스)과 레모네이드와 과실·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준 탄산수는 **제외한다(제2202호)**.

발효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포도즙(grape must)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포도즙은 다른 과실즙과 동일 공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원래의 포도즙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이것은 농축물이나 결정체(후자의 형태는 “포도설탕(grape sugar)”나 “포도꿀(grape honey)”로 거래되고 생강과자·사탕과자 등과 같은 과자류와 베이커리 제조에 사용한다)로 제시될 수도 있다.

발효하지 않은 포도즙(grape must)으로서 알코올을 첨가한 것과 부분적으로 발효한 포도즙(발효가 억제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알코올을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초과인 것은 **제22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의 것(**제2002호**)

(b)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제22류**)



[소호해설]

소호 제2009.11호

“냉동 오렌지주스(frozen orange juice)”란 완전히 전체가 고체 상태로 냉동되지 않은 농축 오렌지주스도 포함한다(비록 영하 18도 전후의 온도로 냉동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도 무관하다).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제0901호)
 -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
 - 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 마. 제2103호나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脞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 바. 제2404호의 물품
 - 사.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 아.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에 열거한 볶은 커피 대용물의 추출물(extract)은 제2101호로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 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21.01 -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2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30 -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 진짜 커피 [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용한다.
-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차·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
- (4) **커피·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볶아서 잘게 부순 커피와 식물성 지방(때때로 그 밖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coffee paste)”
 -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 (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보리“커피”·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치코리움 인티부스 변종 사티붐(*Cichorium inty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제4부
21.01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보리·밀·호밀]·쪄낸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식용 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덩어리·알갱이·가루·액체나 고체 모양의 추출물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이나 다른 성분(예: 소금이나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 (b) 향과 맛을 가한 차(**제0902호**)
- (c) 캐러멜(캐러멜화 당밀·캐러멜화 설탕)(**제1702호**)
- (d) **제22류**의 물품

21.02 -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baking powder)

2102.10 - 활성 효모

2102.20 -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2102.3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A) 효모(yeasts)

이 호에 해당되는 효모는 활성상태나 불활성 상태일 수 있다.

활성 효모(active yeast)는 보통 발효를 촉진시키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 중에 번식한 특성의 미생물[대부분 사카로마이세스(*Saccharomyces*)속의 것]로 구성한다. 또한 효모는 공기봉입 방법에 따라서 일부나 전부 발효를 방지하여 제조할 수 있다.

활성효모는 다음과 같다

- (1) **양조 효모(brewery yeast)** : 이는 맥주 발효 통 안에서 형성되며, 보통 이들은 홉(hops)의 쓴맛향과 맥주의 냄새를 가진 황갈색 페이스트(paste)나 고체 상태로 제시된다.
- (2) **증류 효모(distillery yeast)** : 이는 증류주 제조에서, 예를 들면, 곡물·감자나 과실의 발효 중에 생성되며 증류에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는 단단한 크림색의 페이스트이다.
- (3) **베이커리 효모(bakers' yeast)** : 이것은 당밀(糖蜜: molasses)과 같은 탄수화물 매개체에서 효모 균주를 특별한 조건 하에서 특별히 배양한 것을 증식하여 생산한다. 보통 알코올 냄새를 가진 압축한 황회색 케이크(압축효모)의 상태로 시판한다. 그러나 이것은 건조한 형태(보통 낱알 형태)나 액체상태 효모로도 시판한다.
- (4) **배양 효모(culture yeast)** : 위생시설 상태 하에서 제조한 순종의 효모이며, 증류수·젤라틴이나 한천에 현탁시킬 수 있다. 보통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한 용기에 일정량을 포장하여 시판한다.
- (5) **종자 효모(seed yeast)** : 연속적인 발효공정에 의해 배양효모에서 생성되며 상거래 관습상의 효모의 종자로 이용한다. 보통 증기가 있는 압축 상태와 플라스틱의 덩어리 모양이나 현탁액의 형태로 시판한다.

불활성 효모(inactive yeast) : 보통 양조나 증류공업 등에 더 이상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활성을 가진 양조증류나 베이커리 효모를 건조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은 식용(비타민B의 원천)이나 동물사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조 효모는 특별히 조제한 활성효모에서 직접 생산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호에는 사카로마이세스(*Saccharomyces*)속에 속하지 않는 효모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건조 효모(예: *Candida lipolytica* 또는 *tropicalis* · *Candida maltosa*)도 분류한다. 이들은 가스오일(gas oil)이나 노멀 파라핀(n-paraffin)과 같은 탄화수소나 탄수화물을 함유하는 기질에서 배양된 효모를 건조하여 얻어진다. 이러한 건조 효모는 특별히 단백질이 풍부하여 동물사료로 사용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석유단백질(petroprotein)**이나 **효모생체단백질(yeast bioprotein)**로 알려져 있다.

(B)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와 단세포 조류(藻類 : algae)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살아 있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이곳에 **특히** 분류하는 것은 탄화수소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배양하여 얻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물질은 특히 단백질이 풍부하므로 보통 동물사료에 이용한다.

이 그룹의 특정한 물질은 사람의 소비를 위한 식이보조제나 동물의 사료용[예: 가루나 태블릿(tablet) 형태]으로 포장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안정제(stabilising agent)와 산화방지제(anti-oxidants)와 같은 적은 양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한 물질들은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첨가로 인하여 미생물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에 분류한다.

(C)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prepared baking powder)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prepared baking powder)”는 화학물질[예: 중탄산나트륨 · 주석산(tartaric acid) · 탄산암모늄 · 인산염(phosphates)]에 전분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적당한 조건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빵을 구울 때 빵 반죽을 부풀리는데 사용한다. 보통 여러 가지의 명칭[베이킹 파우더(baking powder) · Alsatian leaven 등]으로 소매용 포장[주머니(sachet) · 깡통 등]으로 판매한다.

이 호에서 **특히**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팽창제 혼합(self-raising) 곡물 가루 : 예를 들면, 베이킹 파우더를 첨가한 곡물 가루(**제1101호나 제1102호**)
- (b)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 (c)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백신(**제3002호**)
- (d)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 (e) 효소(enzyme)[아밀라아제 · 펩신 · 레네트(rennet) 등](**제3507호**)

21.03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 - 간장

2103.2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2103.30 -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90 - 기타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곡물 가루·전분·기름·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é sauce)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전(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제9류 해설서 총설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마요네즈·샐러드 드레싱·베어네즈(Béarnaise)·볼로네즈(bolognaise)(잘게 저민 육·토마토 퓨레·향신료 등을 함유한다)·간장(soya sauce)·버섯소스(mushroom sauce)·우스터소스(Worcester sauce)(보통 농도가 짙은 간장을 기본 재료로 하여 식초에 향신료를 침투시키고 식염·설탕·캐러멜과 겨자를 가하여 제조)·토마토 케첩(토마토 퓨레·설탕·식초·식염과 향신료로부터 만든 제품)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셀러리엄(조리용 식염과 미세하게 갈은 셀러리(celery) 종자의 혼합물)·소시지 제조용 혼합조미료·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해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제22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예: 조리용 포도주와 조리용 꼬냑). 이 호에는 또한 제1211호에 분류되는 식물과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로서 조미용 소스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도 분류한다.

위에서 설명한 제9류와 제20류의 물품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육(肉)·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제1603호)
- (b)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제2104호)
- (c) 식품 조제품에 첨가제(additive)로서 사용하는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는 가수분해 단백질(제2106호)
- (d)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B)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mustard flour and meal)(prepared mustard)

겨자의 고운 가루(flour)·거친 가루(meal)는 제1207호의 겨자의 종자를 잘게 부수고 체질하여 얻는다. 백색이나 흑색의 겨자의 종자나 두 가지의 혼합물로부터 얻는다. 잘게 부수기 이전에 종자의 껍질이나 지방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용도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제한 겨자(prepared mustard)도 분류하는데, 조제한 겨자는 겨자의 고운 가루에 소량의 다른 성분(곡물 가루·강황·계피·후추 등)을 혼합한 것이나 겨자의 고운 가루 혼합물로 이루어진 페이스트(paste)에다 식초·포도즙이나 포도주를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에다 소금·설탕·향신료나 그 밖의 조미료를 첨가할 수도 있다.

이 호에서 특히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겨자 종자(제1207호)
- (b) 불휘발성(fixed) 겨자유(제1514호)
- (c) 겨자종자 오일케이크, 즉 겨자종자에서 불휘발성 기름을 추출한 후 잔유한 물품(제2306호)
- (d) 겨자의 정유(essential oil)(제3301호)

21.04 - 수프 · 브로드(broth)와 수프 · 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 - 수프 · 브로드(broth)와 수프 · 브로드(broth)용 조제품

2104.2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A) 수프(soup) · 브로드(broth)와 수프 · 브로드용 조제품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단지 물 · 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와 브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 · 곡물 가루 · 전분 · 타피오카(tapioca) · 파스타 · 쌀 · 식물 추출물(extract) 등] · 육(肉) · 육 추출물 · 지방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펩톤 · 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태블릿(tablet) 모양 · 케이크 모양 · 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

(B)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은 영유아(infant)용 · 어린이(young children)용 · 식이요법용으로 육 · 어류 · 채소 · 과일 등의 기본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한 것이다. 기본성분 외에 이들 조제품은 식이요법의 목적(균형식) · 조미목적 · 보존의 목적 · 그 밖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치즈 · 알의 노른자위 · 전분 · 덱스트린(dextrin) · 소금 · 비타민과 같은 물질을 소량으로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은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을 함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각이 소량으로 존재하는 **경우**, 즉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보통 영유아(infant)용 ·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직접 먹거나 데워 먹기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성분으로 잘 개어진 죽 상태로 조제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한 끼 분량이 밀폐된 병(jar)이나 캔에 들어 있다.

이 호에서는 영유아(infant)용 · 어린이(young children)용이나 식이요법용 조제품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것 이외의 것이나 용기 내의 순중량이 250g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육 · 설육(脞肉) · 어류 · 채소나 과일과 같은 한 가지 기본재료로 이루어진 이러한 종류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조미 목적 · 보존 목적 · 그 밖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소량의 다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것인지는 상관없다)(보통 **제 16 류**나 **제 20 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건조한 채소의 혼합물[줄리앙(julienne)](가루 상태인지에 상관없다)(**제0712호**)

(b)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 (c) 제16류의 육(肉)·어류 등의 추출물과 즙과 그 밖의 물품
- (d)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일반적으로 제1806호나 제1901호)
- (e) 제2004호나 제2005호의 보존처리한 채소[채소의 혼합물(줄리앙(*julienne*), 샐러드 등)을 포함한다.], 비록 때때로 수프의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상관없다.
- (f) 자기소화 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21.05 -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 (sherbet) · 아이스한 롤리팝프(lollipops)]를 분류한다(코코아를 함유했는지와 포함비율에는 상관없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본질적인 성분에 따라서 분류하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기본 재료와 혼합물은 **제외한다**(예: **제1806호 · 제1901호나 제2106호**).

21.06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2106.90 - 기타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

그러나 이 호에는 식료품을 함유하는 효소 조제품은 **제외한다**[예: 포도당이나 그 밖의 식료품이 첨가된 단백질 분해 효소로 구성된 육연화제(肉軟化劑)(meat tenderiser)]. 이러한 조제품은 이 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507호**에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식탁용 크림·젤리·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가루(감미를 첨가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기본 재료로 한 가루는 그들의 코코아 함유량에 따라서 **제1806호**나 **제1901호**에 분류한다(제19류 해설서 총설 참조). 그 밖의 가루는 그들이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으면 **제1806호**에 분류한다. 감미료로 사용하는 향미나 착색한 설탕의 특성을 갖는 가루는 경우에 따라 **제1701호**나 **제1702호**에 해당한다.
- (2) 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탄산수소나트륨·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감초 추출물(extract)을 기본 재료로 한 음료제조용의 향미용 가루("cocoa-powder"로 판매한다)
-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나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하는 것
- (4)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나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 :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팬시 비스킷(fancy biscuit)·파이(pie)·케이크(cake)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한다.
- (5)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는 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304호**),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

- (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香味: flavouring) 성분을 함유한다(전부나 일부분). 그 결과로 해당 음료는 대개 설탕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포도주나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 이들 조제품은 물·알코올 등의 불필요한 대량 수송을 피하기 위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제시한 대로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

이 호에는 하나나 그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2호)**.

- (8) 천연이나 인조의 향료[예: 바닐린(vanillin)]를 기본 재료로 한 식용의 태블릿(tablet)
- (9) 단과자·껌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
- (10) 사카린(saccharin)과 어떤 식품[예: 유당(lactose)]으로 구성된 감미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 [예: 태블릿(tablet)]
- (11)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
-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블랙커런트(blackcurrant)·레몬(lemon)·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
 - 이 호의 합성조제품[위의 (7)을 참조]이 첨가된 향미(香味)있는 시럽으로서 특히 콜라에센스(cola essence)와 구연산을 함유하며 캐리멜화 당(caramelised sugar)으로 착색한 것이나 구연산과 과실[예: 레몬이나 오렌지]의 정유(essential oil)를 함유한 것 ;
 -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견과류 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해당 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 ;
 -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과실의 정유(essential oil)·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

-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
-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 : laxative)·하제(下劑 : purgative)·이뇨(利尿 : diuretic)·구풍(驅風 : carminative)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특효가 있는 활성 성분을 포함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침출액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

이 호에서는 또한 **제0813호나 제9류**에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도 **제외한다**.

- (15) 서로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이나 제1211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 이들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료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특성이 제9류에 해당하는 종(種)의 함유량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유형의 물품은 **제외한다(제9류)**.

-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이 조제품들은 관련 영양성분의 결핍 이외에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3호나 제3004호)**.

- (17) 설탕·향미제나 착색제[예: 식물 추출물이나 오렌지, 블랙커런트(blackcurrant) 등과 같은 특정 과일이나 식물]·산화방지제(antioxidant)[예: 비타민 씨나 시트르산(citric acid)이나 양쪽 모두]·보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갱이나 가루 모양의 조제품으로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 그러나, 설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1701호나 제1702호**에 해당한다.

이 호는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

- (a)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
- (b) 사람의 소비를 위하여 식이보조제로 포장된 제2102호의 미생물(**제2102호**)
- (c) 니코틴을 함유한 추잉껌(**제2404호**)
- (d) 식용의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서,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제1806호**)

제 2 2 류

음료 · 주류 · 식초

주: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 바닷물(제2501호)
 - 증류수·전도도수(傳導度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3호)
 -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으로 한정한다)(제2915호)
 -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 조제향료나 화장용품(제33류)
- 제20류 · 제21류 · 제22류에서 “알코올의 용량”이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 소호 제2204.10호에서 “발포성(發泡性) 포도주”란 밀폐용기에서 섭씨 20도가 유지되었을 때의 압력이 3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이 표의 앞의 류에서 분류한 식료품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그룹을 구성한다.

이들은 4개 주요그룹으로 대별된다.

- 물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음료와 얼음
- 발효한 알코올 음료(맥주 · 포도주 · 사과술 등)
- 증류한 알코올 용액과 음료(리큐르 · 주정 등)와 에틸알코올
- 식초와 식초 대용품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제4류**에 해당하는 액체 낙농품

제4부
제22류

(b)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예: 조리용 포도주와 조리용 꼬냑)(일반적으로 **제2103호**)

(c)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d) 조제향료나 화장품류(**제33류**)

**22.01 -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 - 광천수와 탄산수

220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모든 종류의 천연수(바닷물은 제외한다-제2501호 참조) : 이같은 물은 청정한 것이나 순수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증류수·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수한 물은 제2853호에 분류한다.

이 호는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한 물은 제외한다(제2202호).

- (B) 천연이나 인조 광천수(mineral water)

천연의 광천수는 염이나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천수의 성분은 비교적 여러 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염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예:

- (1) 알칼리성 물
- (2) 황산염성 물
- (3) 할로젠성 물
- (4) 황화성 물
- (5) 비소성 물
- (6) 철분성 물

또한 이같은 천연 광천수는 천연이나 인공적으로 첨가한 이산화탄소를 함유할 수도 있다.

인조 광천수는 천연의 것과 동일 성질의 물을 얻기 위해 해당 천연수에 존재하는 활성요소 [광물성 염이나 가스]를 보통의 음료수에 첨가하여 제조한다.

이 호에는 감미나 향미(오렌지·레몬 등)를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는 제외한다(제2202호).

- (C) 탄산수(aerated water) : 이는 보통의 음료수에 압력을 주어 이산화탄소 가스를 충전한 것을 말한다. 이들은 흔히 “소다수”나 “셀처(Seltzer)수”[진정한 셀처(Seltzer)수는 천연 광수이지만]라 불린다.

이 호에는 감미나 맛이나 향을 넣은 탄산수(제2202호)는 제외한다.

- (D) 얼음과 눈 : 즉 천연의 눈과 얼음과 인조 냉동수

이 호에는 제2105호의 빙과류와 “탄산설(carbonic acid snow)”이나 “드라이 아이스(dry ice)”(즉, 고체 이산화탄소)는 제외한다(제2811호).

22.02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견과류·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 기타

2202.91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2202.99 -- 기타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A)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호에 포함한다.

(1) **감미나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

(2) **레모네이드(lemonade)·오렌지수(orangeade)·콜라(col)와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과일주스·견과류 주스·과실에센스나 혼합 추출물(extract)로 향미(香味)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첨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이나 그 밖의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한다.

(B)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맥아로 만든 맥주 : 알코올의 용량을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로 줄인 것

(2) 진저비어(ginger beer)와 허브비어(herb beer)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

(3)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예 : 레모네이드)의 혼합물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1) 물과 설탕의 첨가와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한 타마린드 넥타(tamarind nectar)**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액체요구르트·그 밖의 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으로서 코코아·과실이나 향미료(香味料)를 함유한 것 (**제0403호**)

(b) **제1702호**의 당시럽과 **제2106호**의 향미료(香味料)를 첨가한 당시럽

(c) 과일·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음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2009호**)

(d)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22.03 - 맥주

맥주는 발아한 곡물(가장 일반적으로 보리와 밀)·물과 홉(hop)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홉의 첨가는 쓴 맛과 향미(香味)를 주고 품질 보존성을 증대시킨다. 때로는 체리나 그 밖의 향미료(香味料)를 발효 중에 첨가한다.

당(糖)(특히 포도당)·착색제·이산화탄소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

발효방법에 따라 하면효모(bottom yeast)를 가지고 저온에서 얻은 **하면발효(bottom fermentation)** 맥주와 상면효모(top yeast)를 가지고 고온에서 얻은 **상면발효(top fermentation)** 맥주가 있다.

맥주는 담색의 것이나 흑색의 것·단 맛의 것이나 쓴 맛의 것·독하지 않은 것이나 독한 것도 있다. 이것은 술통·병·밀폐 금속통에 포장된 것도 있으며, 에일(ale)·스타우트(stout) 등으로 시판한다.

또한 이 호에는 농축한 맥주(concentrated beer)도 분류하는데, 이는 낮은 알코올 도수를 가진(그러나 맥아 추출물의 함량은 높은) 맥주를 원래 용량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가 되도록 진공-농축해서 조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때때로 맥주로 호칭되지만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어떤 음료(예: 물과 캐러멜화한 설탕으로 제조된 음료) (**제2202호**)
- (b) 맥아로 제조한 맥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로 불리는 음료. 이것의 알코올 용량은 전 용량의 0.5% 이하로 감소된 것이다(**제2202호**).
- (c)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2 --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9 -- 기타

2204.30 - 그 밖의 포도즙

(I)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포도주는 신선한 포도의 착즙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성의 최종 물품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보통 포도주(적색·백색·장미색)

(2)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

(3) 발포성(發泡性) 포도주(sparkling wine) : 이들 포도주는 밀폐한 용기 내에서 최종 발효를 유도하거나(발포성 포도주에 적당한), 병에 주입 후 인공적으로 가스를 첨가하는 방법(탄산가스 함유 포도주)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충전되어 있는 것이다.

(4) 디저트 포도주(dessert wine)[때로는 리큐르 포도주(liqueur wine)라고 부른다] : 이 포도주는 알코올분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당분의 함량이 많은 포도즙(이것의 일부만이 발효에 의해 알코올로 변환된다)에서 얻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알코올을 첨가하거나, 알코올을 첨가하여 농축한 포도즙을 첨가하여 강화시킨다. 디저트(또는 리큐르) 포도주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즉, 카나리아(Canary)·사이프러스(Cyprus)·라크리마 크리스티(Lacryma Christi)·머디러(Madeira)·말라가(Malaga)·말름시(Malmsey)·마르살라(Marsala)·포트(Port)·세이모스(Samos)와 셰리(Sherry)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제2205호**에 해당하는 포도주를 기본 재료로 한 음료

(b)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II) 포도즙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포도즙은 감미를 가진 녹황색의 탁한 액체이며, 이는 당류(糖類)(포도당·과당)·산[주석산·말(malic)산 등]·알부민·미네랄·점성물질과 포도주에 포도주가 가지는 독특한 향미를 주는 방향성 물질로 이루어진 액체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포도즙은 발효를 방지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발효(당류가 알코올로 변환)되며 ; 이 발효의 최종 물품은 포도주이다.

포도즙 발효의 자연적인 속도는 포도즙의 발효를 지연하거나 완전히 중지하도록 하는 뮤타지(mutage)라 불리는 공정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뮤타지(mutage) 공정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이 있다.

- (1) 살리실산(salicylic acid)이나 그 밖의 방부제의 작용에 의한 방법
- (2) 이산화황을 포도즙에 포화시키는 방법
- (3) 알코올을 첨가하는 방법 : 이러한 형태의 물품은 흔히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포도주(wine)로 소비한다. 이외에 미스텔레(mistelle)로 불리는 그 밖의 것은 리큐르포도주(liqueur wine)와 식욕 증진제(aperitive)제조에 사용한다.
- (4) 냉동에 의한 방법

이 범주에는 부분적으로 발효한 포도즙(발효가 정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물론 발효하지 않은 포도즙에 알코올이 첨가된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호에서는 포도주스와 포도즙으로서(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발효하지 않은 것이나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제2009호)**.

**22.05 -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5.90 - 기타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주(wine)에 식물성 물질(잎·뿌리·과실 등)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에서 우려낸 액체로 맛과 향을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보통 식욕 증진제(aperitifs)나 강장제로 사용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앞에서 설명한 형태의 음료로서 비타민류나 철 화합물을 첨가하여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 때로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건포도(dried grape)에서 얻어진 포도주(wine)와 방향성(芳香性) 식물이나 물질로 제조된 포도주 (**제2206호**)
- (b)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22.06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사과술(cider)** : 사과주스를 발효하여 제조한 알코올성 음료
- (2) **배술(perry)** : 배주스를 사이다와 유사하도록 제조한 발효주
- (3) **미드(mead)** : 꿀의 수용액을 발효하여 제조한 술[이 호에는 *이드로멜 비뉴(hydromel vineux* : 백포도주·방향성 물질과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미드)를 포함한다]
- (4) **건포도주(raisin wine)**
- (5) **과실주스(신선 포도주스를 제외한다)나 견과류 주스를 발효하여 얻은 와인**(무화과·대추야자나 딸기 와인), 또는 채소주스를 발효하여 얻은 와인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
- (6) **“말톤(malton)”** : 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 와인리스(wine lees)로 제조한 발효음료
- (7) **스프루스(spruce)** : 스프루스 피(spruce fir)의 잎·작은 가지나 스프루스 에센스(spruce essence)로 제조한 음료
- (8) **청주(saké or rice wine)**
- (9) **팜주(palm wine)** : 팜나무(palm tree)의 수액으로 제조한 술
- (10) **진저맥주(ginger beer)와 허브맥주(herb beer)** : 설탕·물·생강(ginger)이나 허브를 효모로 발효하여 제조한 맥주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

이들 음료 중 어떤 종류는 비타민이나 철 화합물이 첨가된 것도 있다. 때로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들은 일반 건강이나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과실주스(사과·배 등)와 그 밖의 음료로서 전용량의 0.5%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각기 제2009호나 제2202호에 분류).

22.07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207.20 -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 제2905호의 그 밖의 비환식 알코올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29류의 주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29류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2)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발효 음료와 주정 음료는 에틸알코올을 함유하는데, 에틸알코올은 특별한 종류의 설탕을 효모나 그 밖의 발효제로 발효하여 얻어진다. 제2207호이나 제2208호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은 발효된 제품을 순차적으로 정제(예: 증류·여과 등)하여 얻어지는데, 그러한 정제공정을 통하여 발효제품의 특징이 사라지고 에틸알코올의 냄새와 맛만을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무색이며 비발포성(非發泡性)인 액체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에틸알코올은 합성을 통하여 제조되기도 한다.

변성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denatured)과 그 밖의 변성 주정(other spirits, denatured)은 공업용에 사용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 하게 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각 국가 간에 상이하다. 이 변성제에는 우드나프타(wood naphtha)·메탄올(methanol)·아세톤(acetone)·피리딘(pyridine)·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벤젠(benzene) 등]·착색제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중성주정(neutral spirits)**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1차 증류 때에 존재하는 2차 성분[고급알코올·에스테르·알데히드·산(酸) 등]을 정제(예: 분별증류법)하여 거의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에틸알코올이다.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화학품·바니시 등 제조용의 용제(solvent)·열원(heating)용과 조명원(lightning)용·주정 음료의 제조용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제2208호**)
- (b) 그 밖의 주정(spirits)(변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208호**)
- (c)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고형이나 반(半)고형의 연료[보통 “고형 알코올(solidified alcohol)”로 시판한다](**제3606호**)

22.08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 · 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 2208.2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 2208.30 - 위스키류
- 2208.40 -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 2208.50 - 진(gin)과 제네바(geneva)
- 2208.60 - 보드카
- 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 2208.90 - 기타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포도주(wine) · 사과술 · 그 밖의 발효음료 · 발효한 곡류나 그 밖의 식물성 물품을 증류하여 생산한 **증류주**로서 맛과 향을 가하지 않은 것 ; 이들은 증류주에 그들의 특별한 향 · 맛과 좋은 향기(aroma)를 주는 에스테르(ester) · 알데히드(aldehyde) · 산(acid) · 고급알코올(higher alcohol)등과 같은 2차 성분을 전부나 일부 함유하고 있다.
- (B) 설탕 · 꿀이나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이나 에센스(essence)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liqueur)와 코디얼(cordial)**[예: 증류하거나,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실 · 꽃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 · 추출물 · 에센스(essence) · 정유(essential oil)나 주스, 농축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 이 물질들은 또한 설탕 결정을 함유한 리큐르와 코디얼 · 과실주스 리큐르 · 견과류 주스 리큐르 · 알 리큐르(egg liqueur) · 허브 리큐르(herb liqueur) · 베리 리큐르(berry liqueur) · 스파이스 리큐르(spice liqueur) · 차(茶) 리큐르(tea liqueur) · 초콜릿 리큐르(chocolate liqueur) · 밀크 리큐르(milk liqueur)와 꿀 리큐르(honey liqueur) 등을 포함한다.
-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

이 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주정(에틸알코올과 중성주정)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이고** 앞에서 설명한 (A) · (B) · (C)와는 반대로 향미(香味)와 방향(芳香)을 주는 2차성분의 결정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는 것도 분류한다. 이러한 주정은 공업용인지 음료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에 추가하여,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포도주(grape wine)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grape marc)에서 얻은 증류주[코냑(Cognac) · 아르 마냐(Armagnac) · 브랜디(brandy) · 그라파(grappa) · 피스코(pisco) · 싱가니(singani) 등]
- (2) 발효된 으깬 곡물(보리 · 귀리 · 호밀 · 밀 · 옥수수 등)을 증류하여 얻은 위스키와 그 밖의 증류주
- (3) 발효된 사탕수수(사탕수수 즙 · 사탕수수 시럽 · 사탕수수 당밀)제품을 증류에 의해서만 얻은 증류주(예: 럼 · 태피아 · 카차카)
- (4) 유니퍼베리의 방향성분을 함유한 진(gin)이나 제네바(Geneva)로 불리는 증류주

- (5) 농산물(예: 곡류·감자)을 짓이겨 걸쭉하게 발효·증류시켜 얻은 보드카(vodka)(간혹 활성탄에 처리한 것도 있다)
- (6) 주정 음료(일반적으로 리큐르로 칭하는 것). 즉 아니제트주(anisette)[녹색 아니스와 바디안(badian)에서 얻은 술]·쿠라카오주(curacao)[비터 오렌지(bitter orange)의 껍질로 제조한 술]·쿰멜주(kummel)(회향초나 커민종자로 향미를 가한 술)
- (7) 농도나 색조로 인하여 “크렘(crèmes)”이라 칭하는 리큐르: 이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알코올분이며 감미(예: 코코아크림·바나나크림·바닐라크림·커피크림)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알의 노른자위(egg yolk)·크림(cream)과 같은 물질로 주정을 유효시킨 증류주도 분류한다.
- (8) 과실주(ratafias): 과실 주스로부터 만든 리큐르의 일종으로; 소량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체리·흑색 커런트·나무딸기·살구 등의 과실주)
- (9) 아쿠아비트(Aquavit)와 과실·식물의 부분이나 허브에서 방향을 알코올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 (10) 사과술(칼바도스)·자두(mirabelle·quetsch)·체리(kirsch)나 그 밖의 과실에서 얻은 증류주
- (11) 아락주(arrack) 즉, 쌀이나 팜주(plam wine)에서 얻은 증류주
- (12)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주스를 발효시켜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 (13) **제2205호**에 해당되는 생포도로 제조한 포도주(wine)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들을 **제외한** 알코올성 식욕 증진제(absinth·bitters 등)
- (14) 알코올성 레모네이드(의약용이 아닌 것)
- (15)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 초과인 것(**제22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16)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주정음료[가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라고 부른다]: 이들은 예를 들면, 식물성 추출물·농축 과즙·레시틴(lecithin)·화학제품 등을 기본 재료로 할 수 있고 비타민과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17) 과실·견과류 주스나 물·설탕·착색제·향미료(香味料)나 그 밖의 성분을 증류주에 혼합하여 포도주(wine)와 유사하게 만든 음료(**제22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18) 발효한 사탕무 당밀(糖蜜)을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베르무트(vermouth)와 생포도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식욕 증진제(aperitive)(**제2205호**)
- (b) 변성한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주정(용량에 상관없다)이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로서 알코올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제2207호**)

22.09 -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I) 식초(vinegar)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박테리아인 마이코더마 아세티(*Mycoderma aceti*)나 아세토박터(*acetobacter*)의 작용하에, 보통 섭씨 20℃ ~ 30℃를 넘지 않는 일정 온도와 공기 존재하에서 초산 발효시켜 얻은 산(酸)용액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식초를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의 원료에 따라 구별한다.

- (1) **포도주 식초(wine vinegar)** : 원료인 포도주(wine)의 종류에 따라 담황색이나 적색이 있으며 ; 예를 들면, 포도주 에스테르(wine ester)의 존재 때문에 특별한 향(香 : *bouquet*)을 갖는다.
- (2) **맥주나 맥아에서 얻은 식초 ; 사과술·배술이나 그 밖의 발효한 과실 식초.** 이들은 보통 황색이다.
- (3) **주정 식초(spirit vinegar)** : 이는 자연 상태에서 무색이다.
- (4) **곡물·당밀(糖蜜 : molasses)·가수분해 감자·락토세룸(lactoserum) 등에서 얻은 식초**

(II) 식초 대용물

식초 대용물은 초산(acetic acid)을 물로 희석하여 얻으며, 이 같은 물품은 때로는 캐러멜(caramel)이나 그 밖의 유기착색제로 착색한다(아래의 제외규정(a)도 참조).

*
* *

식초와 식초 대용물[음식의 향미(香味)를 내거나 절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사철쭉과 같은 식물로 향미(香味 : flavour)를 내게 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초산을 전 중량의 10% 초과 함유하는 수용액(**제2915호**). 그러나 식초 대용물로서 식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향(香)을 첨가하거나 착색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초산이 전 중량의 10%에서 15%를 함유한 그러한 용액은 제22류의 주 제1호라목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물품은 이 호에는 분류한다.
- (b)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 (c) 토일렛 비니거(toilet vinegar)(**제3304호**)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

○
○ ○

소호주:

1. 소호 제2306.41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제12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한 가지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또한 특정 물품[예: 와인리스(wines lees)·생주석(argol)·오일 케이크(oil-cake)]도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중량의 3% 이하의 당밀(糖蜜: molasses)·전분물질 등과 같은 결합제(binder)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의미한다.

**23.01 -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1.1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펠릿(pellet)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 뼈·뿔(horn)·딱딱한 껍데기(shell) 등을 **제외한** 전 동물[가금(家禽)류·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이나 동물성 생산품[예: 육(肉)과 설육(屑肉)]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생산품(주로 도살장·수산물가공 모선·통조림 공업 등에서 얻은 것)은 지방과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증기열 처리하여 압축하거나 용제 처리한 것이다.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을 재차 열처리하여 건조와 살균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잘게 부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을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 것도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은 주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나, 그 밖의 목적(예: 비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곤충의 고운가루와 거친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0511호)**.

- (2) **수지박(greaves)** : 돼지나 그 밖의 동물성 지방을 용출 제거 후 남은 세포막질 조직이다. 주로 동물용 사료[예: (dog biscuit)]의 조제품에 사용하나 사람이 먹는데 적합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23.02 -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 2302.1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 2302.30 - 밀에서 나온 것
- 2302.4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 2302.5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곡물의 제분과정에서 생기는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 이 범위에는 본질적으로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쌀과 메밀의 제분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에 대한 제11류의 주 제2호가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한다.

이들은 특히 다음의 것이 있다.

- (1) 밀기울(bran) : 소량의 부착 배유와 약간의 고운 가루를 가진 곡립의 외피로 구성한다.
- (2) 쌀겨(sharps 또는 middlings) : 고운 가루의 제조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잘게 부순 곡물에서 얻어지며 대부분 체로 친(screening와 sieving) 후 남은 껍질(skin)의 얇은 부분과 약간의 고운 가루로 구성한다.

(B) 곡물의 선별과정(sifting)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박(residue)류 : 제분의 앞 공정 때에 얻는 선별과정 잔재물은 본질상 다음의 것으로 구성한다.

- 기초곡물·소립·비정상 모양(mis-shapen)·부순 것·잘게 부순 것의 알갱이
- 기초곡물과 혼합된 여러 가지 잡초의 종자
- 잎과 줄기·광물 등의 조각

이 범위에는 다음의 것을 더 포함한다.

- (1) 사일로(silo)·선창 등을 청소하여 얻는 잔재물로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아주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것
- (2) 표백공정 중 쌀의 알곡(rice grain)에서 제거된 과피(pericarp)
- (3) 곡물 낱알의 겉껍질 벗기기·롤링(rolling)·얇은 조각으로 만들기(flaking)·작은 알갱이로 만들기(pearling)·얇게 잘라내기(slicing)·거칠게 빻기(kibbling)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잔재물

(C) 채두류(菜豆類 : leguminous plant)를 잘게 부순 것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유사한 잔재물과 웨이스트

또한 이 호에는 펠릿(pellet) 형상으로 된 앞에서 설명한 물품을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또한 이 호는 옥수수(corn)를 통째로 잘게 부순 옥수수 속대(cob)로서(껍질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제11류의 주 제2호가목의 옥수수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starch) 함유량과 회분(ash) 함유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곡물을 탈곡하여 얻는 곡물의 껍질(husk)은 **제1213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추출 후에 남은 오일 케이크(oil-cake)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박(solid residue)을 **제외한다(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23.03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2303.2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2303.3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옥수수(corn)·쌀(rice)·감자 등에서 얻은 것]는 펠릿(pellet)이나 가루 상태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cake) 모양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주로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구성한다. 이는 동물사료나 비료로 사용하며 ; 이들 박(residue)의 특징의 것(예: maize steeping liquor)은 항생물질(antibiotic) 제조용 배지(culture)의 생산에 사용한다.
- (B) **비트펄프(beet-pulp)**는 사탕무의 뿌리에서 설탕을 추출한 후에 남은 박(residue)이다. 이는 건습(乾濕)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당밀이나 그 밖의 물품을 첨가하여 동물 사료용으로 조제한 것은 **제2309호**에 분류한다.
- (C) **버개스(bagasse)**는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한 후 남은 섬유질의 박(residue)이며 이는 제지공업과 동물사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 (D)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에는 정화 공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여과압축할 때 생기는 박(residue) 등을 포함한다.
- (E) **양조하거나 증류 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곡류**(보리·호밀 등)의 **드레그(dregs)** : 맥주 제조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wort)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찌꺼기로 구성한다.
 - (2) **발아한 맥아(malt sprout)** : 가마 중에서 건조 공정시 발아한 곡류로부터 분리한다.
 - (3) **흙 박(spent hops)**
 - (4) 곡류·종자·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dregs)**
 - (5) **세정 사탕무 펄프(beet pulp wash)**[사탕무 당밀을 증류하고 남은 박(residue)]
(위 모든 물품은 습윤 상태나 건조 상태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으로서 펠릿(pellet) 모양인 것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설탕 추출이나 정제 결과로 얻는 당밀(**제1703호**)
- (b) 불활성 효모나 사용한 효모(**제2102호**)

- (c) 사탕무 당밀(糖蜜)의 박(residue)을 태우고 세척하여 얻은 조상(粗狀)의 칼륨염(제2621호)
- (d) 버개스 펄프(bagasse pulp)(제4706호)

23.04 -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용제(solvent)나 압축기·회전추출기(rotary expeller)로 대두에서 착유한 후 남은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solid residue)**을 분류한다. 이러한 유박(residue)은 유용한 동물사료가 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유박(residue)은 슬래브(slab : cake)·거친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일 수도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또한 식용에 적합한 비텍처화(non-textured)된 탈지(脫脂) 대두의 고운 가루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오일 드레그(oil dregs)(**제1522호**)

(b) 탈지(脫脂) 대두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 식료품의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과 텍스처화(textured)한 대두의 고운 가루(**제2106호**)

23.05 -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대해서는 제2304호의 해설서를 준용한다.

23.06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 2306.1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 2306.2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 2306.3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 2306.41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 2306.49 -- 기타
- 2306.5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 2306.6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 2306.90 - 기타

제2304호나 제2305호의 물품들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용제(solvent)나 압착이나 회전식 추출기에 의해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과실, 곡물의 씨눈(germ)이나 미생물로부터 기름을 추출 후 남은 **오일 케이크(oil-cake)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solid residue)**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쌀겨로부터 기름(oil)을 추출한 후의 유박(solid residue)으로서 얻어진 탈유한 쌀겨도 포함한다.

특정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solid residue)[아마의 씨(linseed)·목화씨·참깨·코프라(copra) 등]은 유용한 동물사료이며; 어떤 것(예: 피마자)은 동물사료에 부적당하여 비료에 사용하며; 그 밖의 것(예: 쓴맛 아몬드·겨자케이크)은 정유를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유박(residue)은 슬래브(slab : cake)·거친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의 것도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식용에 적합한 텍스처화하지 않은(non-textured) 탈지(脫脂)한 고운 가루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오일 드레그(oil-dregs)를 **제외한다(제1522호)**.



[소호해설]

소호 제2306.41호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 관해서는 제12류의 소호주 제1호와 제1205호의 해설 내용을 참조한다.

23.07 -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와인리스(wine lees) : 포도주(wine)의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진흙과 같은 침전물로 생긴다. 이상의 침전물을 압축여과하면 와인리스는 고체 상태로 얻어지며, 건조한 와인리스(dried wine lees)는 가루·알갱이 모양이나 불규칙한 조각 모양으로 되어 있다.

생주석(argol) : 포도즙의 발효 중에 포도주통이나 포도주를 저장하는 통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응고물(concretion)이다. 이는 가루·플레이크(flake)·불규칙한 모양의 결정으로 존재하며 ; 회색에서 암적색의 여러 가지가 있다. 최초의 세정 후 생주석은 회색성 황색이나 적색성 갈색 형태이며 이 색조는 원료의 포도주색에 따라 다르다. 이 세정 생주석(washed argol)도 이 호에 분류한다.

와인리스와 생주석(세정 생주석을 포함한다)은 둘 다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는 조상(粗狀) 주석산 수산화 칼륨이다. 이는 백색 결정형이나 결정성 가루로 존재하는 중주석산칼륨 [주석영(酒石英)]의 원료로 이용되며,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안정성이 있는 것이다. 와인리스는 동물 사료의 조제에 사용하며 한편 생주석은 염료의 매염제(mordant)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주석영(酒石英 : cream of tartar)(제2918호)과 주석산칼슘(경우에 따라서 제2918호나 제3824호)은 제외한다.

23.08 - 사료용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waste)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 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박(residue)과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도토리과 마로니에 열매
- (2) 낱알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 옥수수 줄기와 잎
- (3) 사탕무나 당근의 꼭지
- (4)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 (5) 과실 웨이스트(waste)(사과 · 배 등의 껍질과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 · 사과 · 배 · 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pectin) 추출에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 (6) 겨자의 씨(mustard seed)를 잘게 부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는 겨(bran)
- (7) 곡물의 알곡이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에서 커피 대용물[또는 그 추출물(extract)]을 조제한 후 남은 잔유물
- (8) 감귤류의 과즙 제조에서 생기는 폐수(residual water)를 농축하여 얻는 부산물[때로는 “감귤류 과실의 당밀(citrus fruit molasses)”로 알려지기도 한다]
- (9) 2-푸르알데히드(2-furaldehyde)를 얻기 위하여 옥수수 속대(cob)를 가수분해할 때 생기는 잔유물(“hydrolysed ground corn cob”로 알려진 것)

이 호의 물품에는 펠릿(pellet) 모양의 것도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23.09 - 사료용 조제품

2309.1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309.90 - 기타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I) 가당한 사료

가당한 사료는 당밀(糖蜜: molasses)이나 그 밖의 유사한 감미물질(보통 전 중량의 10% 초과)의 것에 여러 개의 영양물질을 혼합한 것이며, 주로 소·양·말이나 돼지의 사료로 사용한다.

당밀(糖蜜)은 영양가가 높은 이외에, 사료의 미각을 증진시키며 동물이 먹기 싫어하는 짙·곡물의 외피·아마 플레이크(linseed flake)·과실 찌꺼기와 같은 영양가가 낮은 물품의 이용도를 증진시킨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감미를 가한 조제품은 직접 동물에 공급한다. 그러나 일부의 것은 당밀(糖蜜)에 밀기울(wheat bran)·팜핵(palm kernel)·코프라 오일 케이크(copra oil-cake)와 같은 영양가가 높은 사료를 혼합하여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II) 그 밖의 조제품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 (1) “에너지(energy)” 영양물 : 전분·당류·셀룰로오스(cellulose)와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 [고칼로리(high-calorie)]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 체내에서 “연소(burned up)”시켜 사육자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같은 물질의 예로는 곡물·사료용 사탕무(half-sugar mangold)·탈로우(tallow)·짚이 있다.

-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의 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여러 가지의 동물 생산물(밀크·알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적에 사용하는 단백질이 풍부한 물질의 예로는 채두류의 종자·양조 드레그·오일케이크(oil-cake)·낙농 부산물이 있다.

미네랄(mineral)은 주로 뼈의 형성에 기여하며, 가금(家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의 껍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칼슘·인·염소·나트륨·칼륨·철·요오드 등이 함유된 것을 사용한다.

- (3) “기능(function)” 영양물 : 이는 탄수화물·단백질과 미네랄의 동화촉진(assimilation)을 하는 물질이다. 이들은 비타민(vitamin)·미량원소(trace element)와 항생물질(antibiotics)을 포함한다. 이 같은 영양물의 결핍이나 부족은 보통 질병을 유발한다.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앞에서 설명한 (A)에 열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로서 액체 상태·점성의 용액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잔류액(수용성 성분 즉, 단백질·비타민B·염 등을 함유하고 있다)을 농축과 안정화하여 만들어지며, 어류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거친 가루나 기름의 제조에서 생긴다.
- (2)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alfalfa : lucerne)즙으로부터 얻어진 원래 모양의 생엽(生葉)의 단백질 농축물과 부서진 생엽(生葉)의 단백질 농축물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 · 프로비타민(provitamin) · 아미노산(amino-acid) · 항생물질(antibiotic) · 콕시디움병 치료제(coccidiostat) · 미량원소(trace element) · 유화제(emulsifier) ·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 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
-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 · 산화방지제 등이다.
- (3) 담체(擔體 : carrier)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나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manioc)과 대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 미들링(middlings) · 효모 · 식품공업의 여러 가지 잔유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magnesite) · 초크(chalk) · 고령토(kaolin) · 염(salt) · 인산염(phosphate)]로 구성된 것

앞의 (1)에 기술된 물질들의 농도(concentration)와 담체(擔體 : carrier)의 성질은 조제품들이 첨가되는 복합 사료 내에서 특히 해당 물질이 균일하게 분산되고 혼합되도록 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
- (b) 앞 (1)에서 설명한 형태의 활성(active)물질과 담체로 구성된 조제품 : 예를 들면, 매스(즉, 균사 · 배양기와 항생물질을 주된 내용물로 하고 있는 발효용기 안에 내용물 전부)를 단순히 건조하여 얻어진, 항생물질제조 공정상에서 생긴 물품. 이 건조된 물품은,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을 첨가 표준화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대략 8% ~ 16%에 해당하는 항생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믹스(premix)”를 조제하는데 기초원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범주의 조제품은 수의과용의 특정 조제품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활성물질을 보다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점이 다르며 때로는 서로 다른 형태로 포장한다.

*
* *

이 호에는 더욱이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고양이 · 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 : 육(肉) · 설육(屑肉)과 그 밖의 성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회 투여분의 양(量)으로 밀폐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 (2) 개나 그 밖의 동물용의 비스킷 : 보통 고운 가루 · 전분이나 곡물 가공품에 수지박(greaves)이나 육(肉)의 거친 가루를 혼합하여 얻은 것
- (3) 감미조제품[코코아(cocoa)를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개나 그 밖의 동물용의 먹이로만 사용하도록 된 것
- (4) 조류(鳥類)용의 사료[예: 밀리트(millet) · 카나리시드(canary seed) · 껍질을 벗긴 귀리와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색 잉꼬용의 주식이나 완전사료로 사용하는 것]나 어류용의 사료

이 호의 동물 사육용 조제품은 펠릿(pellet)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펠릿(pellet) : 단일재료나 하나의 특계호(特掲号 : specific heading)에 분류하는 수개의 재료의 혼합물로 형성된 것이며, 보통 전 중량의 3% 이하의 비율로 결합제[당밀(糖蜜 : molasses)·전분질의 물질 등]를 첨가한 것이라도 상관없다(**제0714호·제1214호·제2301호** 등).
- (b) 곡물 낱알의 단순한 혼합물(**제10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의 단순한 혼합물(**제11류**)
- (c)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와 **제2106호**)
- (d) **제2308호**의 식물성 웨이스트(waste)·잔유물과 부산물
- (e) 비타민(vitamin) : 화학적으로 단일하거나 혼합되었는지, 용제(solvent)에 침적한 것인지 산화방지제나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기질에 흡수시키거나 젤라틴(gelatin)·왁스(wax)·지방(fat) 등을 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단, 이들 첨가제·기질(substrate)이나 코팅이 보존이나 수송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936호**).
- (f) **제29류**의 물품
- (g)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 (h) **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
-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
- (k) 여과와 제일단계 추출에서 얻는 것으로서 항생물질 제조공정의 중간생성물과 이들 공정의 잔유물로서 일반적으로 항생물질의 함량이 전 중량의 70% 이하인 것(**제3824호**)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주:

1. 이 류에서 의약품 껴련은 제외한다(제30류).
2. 제2404호와 이 류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한다.
3. 제2404호에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한다는 것은 가열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403.11호에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란 워터파이프(water pipe)로 흡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담배(담배와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를 말하며, 방향성(芳香性) 기름·추출물(extract)과 당밀(糖蜜)이나 당(糖)을 함유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를 통하여 흡연하기 위한 물품으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

총설

담배는 가지(*Solanaceae*)과의 담배(*Nicotiana*)속의 여러 가지의 재배변종에서 얻으며, 잎의 크기와 모양은 종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채집방법과 가공법은 담배의 종류(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담배는 평균적인 완숙 상태에서 원상태로 절단하거나(줄기절단법), 성숙한 상태에 따라서 담배 잎을 별도로 딸 수도 있다(priming). 그러므로 원상태로 건조하거나(줄기 채로) 분리한 잎상태로 건조한다.

건조방법은 태양건조(대기 중)·공기건조(공기가 자유로이 순환되는 문닫힌 창고)·연도건조(열풍 중)·화열건조(직화)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선적을 위하여 포장을 하기 전에 건조한 잎(dried leaf)은 그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리가 되어진다. 이 처리는 일정 관리하에서 천연의 발효[자바(Java)종·스마트라(Sumatra)종·하바나(Havana)종·브라질(Brazil)종·오리엔트(Orient)종 등]나 인공의 재건조로 행해진다. 이 처리와 건조는 포장 후 자연적으로 숙성하여 담배의 향미와 방향에 영향을 준다.

그와 같이 처리한 담배는 다발(bundle)·베일(bale)(다양한 형태)·통이나 상자에 포장한다. 그와 같이 포장한 때에는 잎은 일렬로 정렬하거나[오리엔트(Orient)종] 한쪽 부분을 묶거나(여러 개의 잎을 따로 묶거나 그 밖의 담배잎으로 묶는다) 단순히 흩어진 잎으로 남겨둔다. 이들은 보통 보존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압축한다.

어떤 경우에는, 발효에 더하여(또는 발효 대신), 품질의 보존이나 향과 맛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나 습윤 물질을 첨가(포장)한다.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

24.01 -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2401.30 - 담배 부산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잎담배(unmanufactured tobacco)** : 자연 상태인 원형식물·잎·건조한 잎·발효한 잎·원형의 것·줄기를 제거한 것·정돈하거나 정돈하지 않은 것·부순 것·절단된 것(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된 편상을 포함하지만, 흡연용으로 한 담배는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담뱃잎으로 혼합한 것·줄기를 제거한 것과 주로 성형과 건조 방법과 맛과 향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히 혼합한 액체와 함께 케이스(case)에 넣은[“소스를 친(sauced)” 것이나 용액에 담근(liquored) 것] 것도 포함한다.

- (2) **담배부산물(tobacco refuse)**, 예: 담배의 잎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waste)나 담배 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waste)[줄기(stalk·stem)·주맥(midrib)·절단한 부스러기(trimmings)·더스트(dust) 등]

24.02 -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 · 켈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 -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402.20 - 켈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402.90 - 기타

이 호에는 시가(cigar)(말았는지에 상관없다)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와 켈련(cigarette)(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흡연용 담배(어떠한 비율로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2403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물품은 원래 모양의 담배나 담배의 혼합물과 담배 대용물로 만드는데, 혼합물에서의 담배와 담배 대용물의 비율에 상관없다.

(2) 켈련(cigarette)(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만을 함유하고 있는 켈련 외에도 이 호에는 담배와 담배 대용물의 혼합물로 만든 켈련도 포함되는데, 혼합물에서의 담배와 담배 대용물의 비율에 상관없다.

(3) 담배 대용물의 시가 · 셔루트 · 시가릴로 · 켈련. 예: 상추(lettuce)의 변종의 잎을 특별히 가공하여 만든 “켈련”(cigarette : “smoke”)으로서 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

이 호에서는 담배 · 재구성한 담배나 담배 대용물을 함유한 제품으로서, 형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지만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2404호)**.

이 호에서는 의약용 켈련을 **제외한다(제30류)**. 그러나 흡연 습관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어떤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켈련으로서 의약적인 특성을 주기 위한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24.03 -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2403.19 -- 기타

- 기타

2403.91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2403.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흡연용 담배(어떤 비율로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는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파이프용이나 쉐던제조용 제조담배

(2)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 보통 고도로 발효하거나 침지시킨 것이다.

(3) **코 담배(snuff)** : 향과 맛을 다소 가한 것

(4) **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용액에 담근 담배**

(5) **제조 담배 대용물** : 예를 들면,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 단, 카나비스(cannabis)와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제1211호)**.

(6) **“균질화한(homogenised)” 담배·“재구성한(reconstituted)” 담배** : 담배의 잎·담배 웨이스트(waste)나 담배의 부산물이나 더스트로부터 미세하게 분할한 담배를 응집하여 제조한 담배[예를 들면, 담배 줄기에서 나오는 셀룰로오스(cellulose) 시트와 같은 것으로 뒤를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보통 사각형의 시트(sheet) 모양과 스트립 모양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시트 모양(포장지로서)이나 조각조각으로 내거나 잘게 자른(충전재로서) 상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7) **담배 추출물과 담배 에센스(essence)** : 이는 습기 있는 잎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 웨이스트(waste)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 주로 살충제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니코틴(nicotine)[연초에서 추출한 독성 알칼로이드(alkaloid)](**제2939호**)

(b) **제3808호**의 살충제

○
○ ○

[소호해설]

소호 제2403.11호

이 소호는 특히, 담배·당밀(糖蜜 : molasses)이나 설탕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서 과일·글리세롤(glycerol)·방향성(芳香性) 기름과 추출물(extract)로 가향한 것을 포함한다(예: “Meassel”이나 “Massel”). 또한 이 소호는 당밀(糖蜜)이나 설탕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도 포함한다(예: “Tumbak”이나 “Ajami”).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용으로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한다**(예: “Jurak”)(**제2403.99호**).

워터파이프(water pipe)는 “narguile”·“argila”·“boury”·“gouza”·“hookah”·“shisha”이나 “hubble-bubble”과 같은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24.04 -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2404.11 --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2404.12 --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404.19 -- 기타

- 기타

2404.91 -- 경구(經口)용

2404.92 -- 피부 투여용

2404.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A)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러한 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니코틴 함유 용액으로서, 전자담배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2)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예: 스트립이나 알갱이)로 되어 있고, 전기장치[전기 가열식 담배 시스템(EHTS)], 화학반응, 탄소 열원(熱源) 사용[탄소 가열식 담배 제품(CHTP)]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담배 가열식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3) 담배·재구성한 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지는 않고,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전자담배나 이와 비슷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4)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열 이외의 다른 방법(예: 화학적 공정이나 초음파 증발을 수단으로 하여)을 통해 흡입용 에어로졸을 생산하는 장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5) 1회용 전자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 이와 유사한 1회용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예: 전자담배용 용액(e-liquid), 겔(gel)]과 전달 기구(delivery mechanism)를 통합된 하우징 안에서 모두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용액이 다 소모되거나 배터리가 다 사용되면 버리도록 설계 되어 있는 것(용액을 다시 채우거나 배터리를 재충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B) 그 밖의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하지만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지는 않으며, 흡입 이외에 씹기·용해·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경피(經皮) 흡수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人體)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이 그룹에는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체(人體)의 니코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니코틴 흡수 축소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는 니코틴 대체 요법(NRT) 물품 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용 니코틴 함유 물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담배·재구성한 담배나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연소 후에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제2402호와 제2403호**)과, 씹는 담배·코담배(**제2403호**)
 - (b) 니코틴(담배에서 추출된 독성 알칼로이드와, 합성에 의해 얻어진 이러한 알칼로이드)(**제2939호**)
-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주: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煨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어스컬러(earth colour)(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약품

라.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제33류)

마.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제3816호)

바. 포석(鋪石)·연석(緣石)·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802호), 지붕용·외장용(facing)·방습층용 슬레이트(제6803호)

사.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나 제7103호)

아. 제3824호의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자. 당구용 초크(제9504호)

차. 필기용·도화용 초크나 재단사용 초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하는 물품은 제2517호로 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특히 팽창되지 않은 질석(蛭石)·진주암(眞珠巖)·녹니석(綠泥石),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의 운모(雲母) 모양 산화철, 해포석(海泡石)(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박(琥珀), 판(板) 모양·막대(rod, 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시킨 해포석(海泡石)과 응결시킨 호박(琥珀)(성형한 후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산화스트론튬은 제외한다], 도자(陶瓷)·벽돌·콘크리트 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총설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나 세척한 것(가공품 그 자체의 구조는 변화 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부순 것·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인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浮遊選鑛 : concentrated by flotation)한 것·자기선광(磁氣選鑛 : magnetic separation)한 것이나 그 밖의 기계적 방법으로 선광(選鑛 : concentrated)한 것·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에 의하여 선광(選鑛)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류의 물품은 수분제거나 불순물의 제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열처리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열처리가 화학구조나 결정구조를 변성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열처리[예: 배소(焙燒 : roasting)·융해(fusion)나 하소(calcination)]는 호의 본문에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화학구조이나 결정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처리는 제2513호와 제2517호의 본문에서 열처리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호의 물품에 허용한다.

이 류의 생산품은 항분제(抗粉劑 : anti-dusting agent)를 첨가함으로써 일반적 용도 이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게 되지 않는 한 이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예: 재결정 방법에 의하여 순수화시킨 것·이 류의 같은 호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성형이나 조각하여 만든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류에 분류한다**(예: 제28류나 제68류).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 (1) 그들 물품의 성질상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처리를 하여야만 되는 물품. 예: 순수한 염화나트륨(제2501호)·정제한 특정형의 황(제2503호)·샤모트 어스(chamotte earth)(제2508호)·플라스터(plaster)(제2520호)·생석회(生石灰 : quicklime)(제2522호)와 수경성(水硬性)시멘트(제2523호)
- (2)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처리방법 이외의 별도의 특정한 상태나 방법으로 가공된 물품. 예: 독중석(毒重石 : witherite)(제2511호)·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제2512호)·백운석(白雲石 : dolomite)(제2518호)[하소(煨燒 : calcined)한 것];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시아(제2519호)[용융(溶融 : fused)한 것이나 하소(煨燒 : calcined)한 것(dead-burned(sintered)나 caustic-burned)]. 소결(燒結)마그네시아[dead-burned(sintered) magnesia]의 경우에는 소결(燒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산화물(예: 산화철·산화크로뮴)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제2506호, 제2514호, 제2515호, 제2516호, 제2518호, 제252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할 수도 있다.

특정 물품이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될 때에는 제2517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71류**에 해당되는 귀석이나 반귀석은 **제외한다**.

25.01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요리용 염·식탁염) 사용하거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필요할 때에는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 보통의 채굴[암염(岩鹽 : rock salt)]에 의하거나,
- 용액추출에 의한 것[압력 하에서 염층에 물을 주입하여 포화한 염수(鹽水 : brine)를 표면으로 끌어 올리는 것]

(B) 증발염(evaporated salt)

-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은 해수를 태양에 증발시켜 얻는다. ;
- 정제염(refined salt)은 포화염수를 증발하여 얻는다.

(C) 해수·염수(鹽水 : brine)와 그 밖의 염류 액(saline solution)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소량의 요오드·인산염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처리된 염(예: 식탁염)
- (2)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나 유동제(free-flowing agent)가 첨가된 염
- (3)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성시킨(denatured) 소금
- (4) 특히 화학적 공정(예: 전기분해) 후에 남거나, 어떤 광석을 처리할 때 부산물로 얻는 잔여 염화나트륨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셀러리 소금(celery salt)과 같이 소금이 첨가된 조미료(**제2103호**)
- (b) 앰플(ampoule)에 넣은 염화나트륨 수용액(바닷물을 포함한다)과 의약품으로 조제한 그 밖의 염화나트륨(**제30류**),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용 염화나트륨수용액(살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의료용이나 의약품의 것은 제외한다)(**제3307호**)
- (c) 배양한 염화나트륨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를 제외한다)(**제3824호**)
- (d) 염화나트륨의 광학소자(**제9001호**)

25.02 -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배소(焙燒 : roast)하지 않은 모든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황화철광(cupreous iron pyrite)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황화철광(pyrite)은 주로 황화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맥석(gangue)이 제거되면 금속광택을 갖는 회색이나 황색이다. 가루 모양인 경우에는 보통 회색이다.

배소(焙燒)하지 않은 황화철광은 주로 황 추출에 사용하며, 어떤 황동철광(cupreous pyrite)은 부산물로서 구리를 회수하는데 사용할 때도 있다.

이 호에는 배소(焙燒)한 황철광은 모두 **제외한다(제2601호)**.

또한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황동광(chalcopyrite)(구리와 철의 황화물의 혼합물)(**제2603호**)

(b) 백철광(marcasite)(반귀석)(**제7103호**)

25.03 - 황[승화황(昇華黃)·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유리(遊離) 상태로 생기는 가공하지 않은 황(기계적인 공정으로 맥석 부분을 제거하여 농축했는지에 상관없다)
- (2) 용융(溶融 : melting)법으로 황광에서 추출한 정제하지 않은 황. 이 공정은 황건조 노 [sulphur kiln(calcaroni)]· 노(爐 : furnace)(Gill furnace)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시굴된 지하 구멍에 파이프를 넣어서 이에 과열 증기를 첨가하여 황을 침전시키는 방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Frasch 공정).
- (3) 황화철광을 배소(焙燒 : roast)하거나 그 밖의 황광을 처리하여 얻은 정제하지 않은 황
- (4) 석탄가스를 정제할 때 부산물로서 얻은 정제하지 않은 황· 황을 함유한 노정 가스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가공하지 않은 황· 유황화합물이 혼합된 천연가스에서 얻은 가공하지 않은 황과 유황화합물이 혼합된 조원유의 정제에서 얻은 가공하지 않은 황. 이같이 얻은 황은 때로는 “정제황(purified sulphur)”이나 “침강황(沈降黃 : precipitated sulphur)”이라 부르지만 **제2802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침강황(沈降黃)과는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3)·(4)항에서의 정제하지 않은 황은 때로는 상당히 순수하다. 특히 프라쉬 공정(Frasch process)으로 생산된 황은 소량의 불순물을 함유하며 ; 실제로는 정제하지 않고 보통 거친 덩어리(lump)나 더스트(dust)로 제시한다.
- (5) 정제 황(refined sulphur) : 정제하지 않은 황을 증류하여 액체 상태에서 농축하여 얻는다 ; 막대 모양이나 케이크 모양으로 성형되거나 고화(固化 : solidification) 후 잘게 부수어진다.
- (6) 분말황(triturated sulphur) : 잘게 부순 후 체로 쳐서 기계적으로나 가스흡입으로 얻은 미세 분말형의 황(불순한 것이나 정제한 것)이다. 이 가공품은 제조방법과 입자의 미세함에 따라 “체질한 황(sieved sulphur)”· “키질한 황(winnowed sulphur)”· “원자화한 황(atomised sulphur)” 등으로 불린다.
- (7)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황 증기를 급냉하여 얻어진 황. 이는 불용성인데 특히 이황화탄소(sulphur μ)에 녹지 않는다.

이 호에 분류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황(sulphur)은 화학공업(여러 가지의 황화합물· 황화염료 등의 제조)· 고무의 가황· 포도 재배용의 살균제· 성냥 제조· 황 심지(wicks) 제조· 표백공업용의 이산화황 제조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승화황(昇華黃 : sublimed sulphur)·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제2802호**)을 **제외하며**, 살진균제(fungicide) 등으로 소매용 포장으로 된 황은 **제3808호**에 해당한다.

25.04 - 천연 흑연

2504.1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2504.90 - 기타

천연 흑연(plumbago나 black lead라고도 한다)은 광택과 종이에 써서 그려지는 성질(연필의 심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따라 구별되는 탄소의 변형체이다. 비중은 순도에 따라 1.9에서 2.26이며, 최고품의 탄소의 함량은 90%에서 96%이나, 저급품의 탄소의 함량은 40%에서 80%정도의 것이 있다.

천연 흑연은 단순히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연필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천연 흑연은 광택제·도가니 제조와 그 밖의 내화성 제품의 제조·노(爐 : furnace)의 전극과 그 밖의 전기용품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인조 흑연(천연 흑연과 유사하나 순도는 높고 비중은 낮다)과 콜로이드나 반콜로이드 흑연과 흑연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페이스트(paste) 모양·블록 모양·판(板) 모양과 그 밖의 반제품(semi-manufactured) 상태의 것을 **제외하며(제3801호)**, 또한 천연 흑연의 제품도 제외한다(보통 **제6815호·제6902호·제6903호·제8545호**에 분류).

25.05 -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 - 규사

2505.90 - 기타

상거래 관습상으로 금속의 추출이 가능한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든 천연의 바다 모래·호수 모래·강변 모래나 규사(quarry sand)(즉 광물이 자연 붕괴하여 다소 미립자의 형태인 모래)는 분류하나, 인공적인 방법(예: 분쇄)으로 얻은 모래와 가루은 **제외한다(제2517호**나 암석에 관한 호에 분류).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건축·유기공업·금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규사(silica sand)와 석영사(quartz sand)
- (2) 고령토질 모래(kaolinic sand)를 포함하는 점토사(clayey sand) : 주로 주형과 내화물의 제조에 사용한다.
- (3) 도자(陶瓷)공업에 사용하는 장석성의 모래(feldspathic sand)

천연 모래를 단지 불순물을 제거키 위하여 열처리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금이나 백금을 함유하는 모래·지르콘 모래(zircon sand)·루타일 모래(rutile sand)·일메나이트 모래(ilmenite sand)·토륨광으로 분류하는 모나자이트 모래(monazite sand : monazite)는 **제외한다**. 이 같은 모든 모래는 **제26류**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타르 모래(tar sand)나 “아스팔트 모래(asphaltic sand)”는 **포함하지 않는다(제2714호)**.

25.06 -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 - 석영

2506.20 - 규암

석영(quartz)은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실리카(silica)의 결정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a) 가공하지 않은 상태(crude state)의 것이거나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아야 한다. ; 이를 위해 파쇄축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하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공정으로 본다.
- (b) 보석(예: 수정 · 연수정 · 자수정 · 홍수정)의 제조에 적합한 변종이나 품질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석영이 공업적인 목적[예: 압전기용 석영(piezo-electric quartz)이나 공구 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제외한다(제7103호)**.

규암(quartzite)은 석영의 입자가 규소질의 바인더(siliceous binder)에 의하여 덩어리진 대단히 단단한 암석에 대한 명칭이다.

규암이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은 것,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한 것이면 이 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호 본문에 규정한 것과 같은 단순한 형태를 갖추었거나 공정을 거친 것이라도 규암이 도로 포장용포석(road or paving sett) · 판석(flagstone)이나 연석(curbstone)으로 인정된 형태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제6801호**).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천연 석영사(**제2505호**)
- (b) **제2517호**의 플린트(flint)나 그 밖의 물품
- (c) 석영으로 만든 광학소자(**제9001호**)

25.07 -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고령토(kaolin)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kaolinic clay)를 분류하며, 이들의 주요 성분은 카올리나이트(kaolinite)·디카이트(dickite)·나크라이트(nacrite)와 같은 고령 토광물·아녹자이트(anauxite)와 헬로이사이트(halloysite)이다. 이와 같은 점토는 하소(煨燒 : calcined)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로 알려진 고령토(kaolin)는 높은 등급의 것으로서, 백색이나 거의 백색인 소성점토이며 자기와 제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고령토를 함유한 모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505호)**.

25.08 -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 홍주석(紅柱石) · 남정석(藍晶石) · 규선석(珪線石)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 벤토나이트(bentonite)

2508.30 - 내화(耐火)점토

2508.40 - 그 밖의 점토

2508.50 - 홍주석(紅柱石) · 남정석(藍晶石) · 규선석(珪線石)

2508.60 - 멀라이트(mullite)

2508.70 -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이 호에는 규산알루미늄을 기본 재료로 한 침전물의 흙이나 암석으로 구성된 모든 천연의 점토물질(natural clayey substance)을 분류한다(제2507호의 고령토와 고령토질의 점토는 제외한다). 이 같은 물품의 특징으로는 가소성(可塑性), 가열하면 경화(硬化)되는 성질과 내열성(耐熱性)이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점토류는 요업공업의 원료로 사용한다[벽돌 · 빌딩타일 · 자기 · 도자기 · 토기 · 내화(耐火: refractory)벽돌과 그 밖의 내화(耐火)물품 등]; 또한 보통 점토는 토양 개량에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회합된 수분의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한 것(흡수성의 점토를 생산하기 위해)이나 완전히 하소(煨燒: calcined)한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일반적인 점토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1) **벤토나이트(bentonite)**: 화산재에서 얻은 일종의 점토이며; 주형용 모래의 재료 · 기름 정제할 때의 여과제와 탈색제, 직물의 탈지제로 널리 사용한다.
- (2) **표포토(漂布土: fuller's earth)**: 높은 흡습성을 가진 천연어드성 물질로서, 주로 애터풀 자이트(attapulgitite)로 구성 되어 있다. 이것은 기름 탈색제용 · 방직용섬유 탈지용 등으로 사용한다.
- (3) **홍주석(紅柱石: andalusite) · 남정석(藍晶石: kyanite or disthene) · 규선석(珪線石: sillimanite)**: 천연의 무수(無水) 규산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며 이는 내화물(refractory)의 원료로 사용한다.
- (4) **멀라이트(mullite)**: 규선석(珪線石) · 남정석(藍晶石)이나 홍주석(紅柱石)을 열처리하거나 전기로(爐)에서 산화알루미늄과 실리카(silica)나 점토의 혼합물을 용융(溶融: fused)하여 얻어지며 강한 내열성을 갖는 내화물의 제조 원료로 사용한다.
- (5) **샤모트 어스(chamotte earth)**: “내화(耐火)점토 소분(fire-clay grog)”이라고도 일컬어지며 내화(耐火)점토 벽돌을 잘게 부수거나 다른 내화성 물질과 점토의 혼합물을 하소(煨燒)한 후 잘게 부수어 얻는다.
- (6)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내화(耐火)성 물질이며, 점토를 함유한 석영질의 흙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점토에 잘게 부순 석영이나 석영사를 혼합하여 얻을 때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제2530호에서 규정한 어스컬러(earth colour)의 특성을 가진 점토
- (b) 활성 점토(activated clay)(제3802호)
- (c) 특정 요업제품 제조용의 특수 조제품(제3824호)

(d) 팽창 점토(expanded clay)[경량(輕量)의 콘크리트용이나 방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천연 점토류를 하소(煨燒)만에 의하여 얻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제6806호)



[소호해설]

소호 제2508.10호

제2508.10호는 나트륨 벤토나이트(sodium bentonite)(팽창한 벤토나이트)와 칼슘 벤토나이트(팽창하지 않은 벤토나이트)를 포함한다.

소호 제2508.30호

제2508.30호는 주로 고령토로 구성된 점토로서 그 일부가 “내화 점토(fire-clay)”인 것은 **제외한다**. 그러한 점토는 **제2507호**에 분류한다.

25.09 - 초크

초크(chalk)는 자연적으로 얻은 탄산칼슘의 일종으로서, 주로 수생 미생물의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인산염을 함유하는 초크(제2510호)
- (b) 동석(凍石 : steatite)이나 활석(talc)(때로는 “프렌치초크(French chalk)”나 “베니스초크(Venice chalk)”로 알려져 있다)(제2526호)
- (c) 치약으로서 조제된 가루 초크(제3306호)
- (d) 제3405호에 해당되는 금속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 (e) 가루 상태의 탄산칼슘으로서, 그 입자를 지방산[예: 스테아린산(stearic acid)]으로 방수막 도포한 것(제3824호)
- (f) 당구용 초크(제9504호)
- (g) 필기용이나 제도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제9609호)

25.10 - 천연 인산칼슘 ·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2510.20 - 잘게 부순 것

이 호에는 인회석(apatite)과 그 밖의 천연 인산칼슘(natural calcium phosphate)[인산 제삼칼슘이나 인회토(phosphorite)] ·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과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천연적으로 인산칼슘이 혼합된 초크)만을 분류한다.

이 같은 물품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잘게 부순 것과 단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 그러나 하소(煨燒 : calcined)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은 **제외한다(제3103호나 제3105호)**.

25.11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2511.2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이 호에는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 baryte)-때로는 중방해석(heavy spar)으로 알려진 것]과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 witherite)]**만**을 분류한다. 정제하거나 화학적으로 생성된 황산바륨과 탄산바륨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각각 **제2833호**와 **제2836호**).

대부분이 불순한 산화바륨으로 구성된 하소(煨燒)한 독중석(毒重石)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순수한 산화바륨(purified barium oxide)은 **제외한다(제2816호)**.

25.12 - 규조토[예: 키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질은 단세포 유기물[규조류(diatom) 등]이 화석화되어 형성된 규산질의 흙이며 대단히 가볍다. 이들 물품은 제시될 때에 그 비중이 압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중량(effective weight)을 1000cm³ 당 kg 수로 나타내는 “겉보기 비중(apparent specific gravity)”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한 규조토(siliceous earth)는 키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몰리어스(moler earth)이다. 이 호에 분류한 특정 흙은 때로는 “트리폴리(tripoli)”라고 언급되나 “트리폴리석(rotten-stone)”으로 알려진 진정한 트리폴리(tripoli)와는 혼동치 말아야 하는데, 진정한 트리폴리는 특정 암석이 천연 분해하여 된 것이어서 규조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트리폴리는 연마제와 광택제로 사용하며 **제2513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흙은 때때로 “인푸소리얼 어스(infusorial earth)”로 잘못 불리기도 한다.

이들 흙의 대부분은 제6806호나 제6901호에 열거된 내열제품 · 열절연이나 방음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다이어토마이트의 자른 블록은 하소(煨燒)한 것이 아니라면 **제6806호**에 분류한다. 만약 불로 구운 것인 경우에는 **제6901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부는 연마 가루나 광택 가루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활성화된 다이어토마이트는 **제외한다**[예: 염산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 같은 소결제(sintering agent)를 첨가해서 하소(煨燒 : calcined)한 다이어토마이트(**제3802호**)]. 한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다른 물품을 첨가하지 않고) 하소(煨燒)한 것이나 이 목적을 위하여 산(酸)으로 세척한 다이어토마이트로서 그 물품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25.13 -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 - 부석

2513.2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부석(浮石 : pumice stone)은 때로 다공성(多孔性)의 화산암의 일종인데 거칠고 대단히 가벼우며 보통 백색, 회색이나 때로는 갈색, 적색이다. 또한 이 호에는 잘게 부순 부석(浮石)(bimskies)도 분류한다.

금강사(金剛砂 : emery)는 운모의 입자와 산화철이 혼합된 작고 단단한 산화알루미늄의 결정으로 형성된 조밀한 암석이다. 이는 단지 잘게 부순 후 연마 가루로 사용하기 위하여 암석 형태로 제시될 때도 있다. 잘게 부순 금강사(金剛砂)는 탁한 갈색 가루로서 가끔 광택 있는 입자가 있다. ; 산화철의 입자에 자력(磁力)이 작용한다.

천연 커런덤(corundum)은 역시 대부분 산화알루미늄으로 구성되었으나 금강사(金剛砂)와는 달리 다소 미세한 입자의 상태로 백(bag)에 포장되어 제시될 때가 있다. 가루나 잘게 부순 커런덤은 주로 적은 백색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흑색이나 황색의 입자가 있다. 열처리한 것이라도 천연의 커런덤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는 제71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부드러운 연마나 광택에 사용하는 애쉬 그레이(ash grey)인 로튼 스톤(rotten-stone)으로 알려진 트리폴리(tripoli)와 석류석(garnet)[더스트(dust)와 가루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이 항의 천연의 연마제는 열처리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하는데, 때로는 잘게 부순 후 열처리하여 그의 모세관 현상(capillarity)과 경도(hardness)를 증가시킨다[예: 천연 석류석(natural garnet)].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연마 재료
- (b) 제7103호의 귀석이나 반귀석(예: 루비 · 사파이어)
- (c) 인조 커런덤(corundum)(제2818호) · 탄화규소(제2849호)와 합성 귀석이나 반귀석(제7104호)과 같은 인조 연마제
- (d) 천연이나 합성의 귀석이나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제7105호)

25.14 -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쉽게 얇은 시트로 쪼개지는 슬레이트(slate)는 일반적으로 청회색이나 때로는 흑색이나 자색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 호에는 덩어리,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예: 와이어 스트랜드(wire strand)로]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슬레이트의 가루(powder)과 웨이스트(waste)도 이 호에 포함한다.

반면에 이 호에서는 **제6802호**의 모자이크 큐브(mosaic cube)와 **제6803호**에 분류하는 다음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a) 앞에서 설명한 가공 이외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블록 모양·슬래브(slab) 모양과 시트 모양의 것. 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태로 절단하거나 톱질한 것·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깎은 것·그 밖의 가공한 것
- (b) 지붕용(roofing) 슬레이트·벽체용(facing) 슬레이트·방습층용(damp course) 슬레이트(이 호의 표제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 응결(agglomerated) 슬레이트의 제품

또한 이 호에는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필기용이나 도안용으로 제조한 슬레이트·슬레이트 흑판(**제9610호**)·슬레이트 연필(**제9609호**)은 **제외한다**.

25.15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2515.12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2515.20 -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석고(alabaster)

대리석(marble)은 단단한 석회질의 암석으로 균질화되어 결이 고우며 때로는 결정성이며 불투명이거나 반투명이다. 대리석은 보통 산화광물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색조를 띠우고 있으며 [색과 줄을 넣은 대리석·얼룩 대리석 등] 순백색도 있다.

트래버틴(travertine)은 작은 오픈셀들(open cell)의 층이 있는 석회질 암석의 변종이다.

에코신(Ecaussine)은 벨기에의 에코신(Ecaussines) 지방의 여러 채석장에서 생산된다. 이것은 청회색의 암석으로 불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량의 화석을 포함하고 있다. 부서진 상태의 에코신은 화강암과 같이 표면에 알갱이 모양이 나타나며 때로는 “벨지움(Belgian) 화강암”·“플란더스(Flanders) 화강암”이나 “페티(*petit*) 화강암”으로 알려졌다.

이 호에는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에 사용하는 비중이 2.5 이상의 유사한 단단한 석회질의 암석류를 분류한다**(즉, 1000 cm³당 실 중량 kg).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에 사용하는 비중이 2.5 미만의 석회질의 암석류는 **제2516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 백색이고 균질의 반투명체의 **설화석고(gypseous alabaster)**와 보통 황색을 띠고 결무늬를 가진(veined) **설화석회석(calcareous alabaster)** 모두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덩어리 모양의 것이나, 거칠게 다듬거나 톱질이나 다른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알갱이 모양·조각이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2517호**에 해당한다.

블록 등(즉, 부각한 것·곡괱이로 다듬은 것·망치나 끌 등으로 다듬은 것·샌드 드레스된 것·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 등과 같이 더 가공한 것)은 **제6802호**에 분류한다. 이 분류방법은 블랭크(blank)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사문석(serpentine)이나 오파이트(ophite)[규산마그네슘으로서 때로는 대리석(marvel)이라 부른다] (**제2516호**)
- (b) 석회석(limestone)[인쇄공업에서 사용하는 “석판석(lithographic stone)”이라 알려진 것][가공하지 않은 상태(crude state)인 경우는 **제2530호**]
- (c) 단순히 이 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가공 상태의 것이라도 모자이크 큐브(mosaic cube)나 도로포장용 판석(paving flagstone)으로 확인된 암석(**제6802호**나 **제6801호**의 각 호)



[소호해설]

소호 제2515.11호

이 소호에서, “가공하지 않은 것(crude)”이란 암석의 자연적으로 쪼개지는 면을 따라서 단순히 쪼갠 블록이나 슬래브(slab) 모양의 것을 말한다. 그들의 표면은 흔히 평편하지 않거나 기복이 있으며 종종 그들을 쪼개기 위해 사용한 도구[쇠지레·췌기(wedge)·곡괭이 등]의 자국이 남아 있다.

또한 이 소호에는 채석장에서 암석을 잘게 부수어(곡괭이·화약 등을 사용해서) 얻는 비정형의 암석[채석장 암석·으스러진 돌(rubble)]도 포함한다. 이들은 평편하지 않으며, 부서진 표면과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암석은 흔히 채석자국(blast hole·wedge mark 등)을 가지고 있다. 비정형의 암석은 제방·방파제·도로 기초 등에 사용한다.

또한 이 소호에는 실제의 채석이나 추가 가공에서 생기는 불규칙한 형태의 웨이스트(waste)도 포함하나, 절단이나 건축 공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제2517호**에 분류한다.

“거칠게 다듬은(roughly-trimmed) 것”이란 암석을 채석 후에 블록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거칠게 가공한 것으로서, 아직 거칠고 평편하지 않은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에는 망치나 끌 형태의 도구에 의해 불필요한 흙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소호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블록(block)이나 슬래브(slab)는 **제외한다**.

소호 제2515.12호

이 소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톱질에 의해서 단순히 절단된 블록(block)이나 슬래브(slab)는 그들 표면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톱질[와이어 스트랜드(wire strand)나 그 밖의 톱에 의해]자국이 남아 있어야만 한다. 톱질 자국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국은 매우 경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얇은 종이를 돌에다 대고 가능한 한 골고루 연필로 매우 부드럽고 평편하게 문지르는 방법이 유용하다. 이러한 방법은 정교하게 톱질한 경우나 매우 규칙적인 표면을 가진 경우에도 톱질자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소호에는 톱질 이외의 방법(예: 해머나 끌에 의한 가공)으로 얻어진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block)이나 슬래브(slab)도 포함한다.

25.16 - 화강암 · 반암(斑巖) · 현무암 · 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화강암

2516.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2516.12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2516.20 - 사암

2516.90 -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암석

화강암(granite) : 석영 결정이 장석(長石 : feldspar)과 운모(mica)가 함께 응집하여 형성된 알갱이 모양의 조직을 가진 화성암으로 대단히 단단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3종 물질의 비율과 산화철이나 산화망간의 존재에 따라 색조(회색 · 녹색 · 핑크색 · 적색 등)가 여러 가지이다.

반암(斑巖 : porphyry) : 약간 투명한 화강암 종류의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sandstone) : 석영질이나 규산질의 물질이 천연적으로 응결되어 작은 석영성이나 규암성의 입자로 구성된 침강암이다.

현무암(basalt) : 흑색의 화성암으로서 질이 치밀하고 대단히 단단하다.

또한 이 호에는 그 밖의 단단한 화성암(igneous rock)(예: 섬장암 · 편마암 · 조면암 · 용암 · 휘록암 · 섬록암 · 향암 등)과 제2515호에 해당하지 않는 석비(石碑 : building stone)용 ·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건축용 석회암이나 포트랜드(Portland)석]과 제2515호에 **분류할 수 없는** 천연마그네슘 규산염인 사문암(또는 휘록암)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암석은 제2515호에 해당하는 암석과 같이 동일 제조공정이나 모양으로 얻을 수 있다(제2515호 해설 참조). 이 같은 암석이 머캐덤(macadam) 형태로 부서진 경우는 **제2517호**에 분류하며, 단지 이 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공정 상태의 것이라도 도로포장용 포석(sett) · 판석(flagstone)이나 연석(curbstone)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6801호**에 분류한다.

에코신(ecaussine)은 때로는 "페티 화강암(*petit granit*)" · "벨지움(Belgian) 화강암"이나 "플란더스(Flanders) 화강암"이라 알려졌으며 **제2515호**에 분류한다. 용융(溶融 : fused) 현무암은 **제6815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암석이 알갱이(granule) · 파편(chippings)이나 가루(powder)인 경우는 **제2517호**에 해당된다.



[소호해설]

소호 제2516.11호

제2515.11호의 해설을 참조한다.

소호 제2516.12호

제2515.12호의 해설을 참조한다.

25.17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1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2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30 -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 -- 대리석으로 만든 것

2517.49 -- 기타

이 호에는 자갈(pebble)·왕자갈(gravel)·쇄석(碎石: broken or crushed stone)(서로 다른 종류의 석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또한, 그대로나 잘게 부수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진 돌조각으로 주로 이루어진 건축과 해체 잔해의 분리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를 포함한다. 원형의 작은 덩어리의 플린트(flint)는 석회, 시멘트 등을 잘게 부수기 위해 볼 밀(ball mill)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플린트(flint)는 주로 잘게 부순 후 요업용이나 연마용으로 사용한다. 그 밖의 싱글(shingle)은 볼 밀(ball mill)(예: 석회석·시멘트 등의 분쇄용)이나 도로포장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블록 상태로 절단된 플린트(flint)나 볼 밀(ball mill)에서 사용하고자 인공적으로 원형으로 제조한 자갈(pebble)은 **제외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제6802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머캐덤(macadam)과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이 해당된다.

머캐덤(macadam)은 거칠게 선별한 쇄석(碎石)·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 폐기물이나 이들 물질의 상호혼합물로 구성되며, 타르나 역청(瀝靑)물질 등으로 혼합된 경우는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이라 칭한다.

특별히 조제[예: 광물질의 혼합물을 용융(熔融: fused)]한 물품[예: 경도(硬度)·미끄럼을 막는 성질·가시성(可視性) 등을 증가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 처리재료에 첨가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조제[예: 광물질의 혼합물을 용융(熔融: fused)]한 물품[예: **제3824호**].

또한 이 호에는 제2515호나 제2516호에 해당하는 암석의 작은 알갱이(granule)·파편(chippings)과 가루(powder)가 포함되며; 인공적으로 착색한(예: 쇼윈도 장식용의 것) 암석의 파편(chippings)과 작은 알갱이(granule)는 **제6802호**에 분류한다.

다음 물품들은 열처리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1) 자갈·왕자갈과 쇠석(碎石)
- (2)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
- (3) 제2515호나 제2516호에 해당되는 암석의 알갱이(granule)·파편(chippings)과 가루(powder)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 이 류의 이 호에도 분류될 수 있고 다른 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8.1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2518.2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백운석(白雲石 : dolomite)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천연 복합 탄산염이다.

이 호에는 하소(煨燒 : calcined)하거나 소결(燒結 : sintered)한 백운석(白雲石)을 비롯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백운석(白雲石)을 분류한다. 백운석(白雲石)은 섭씨 700°C ~ 1,000°C의 온도 범위에서 하소(煨燒)되어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킴으로써 마그네슘과 칼슘 산화물로 변환되어진다. 반면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은 섭씨 1,700°C ~ 1,900°C의 온도 범위에서 백운석(白雲石)을 가열하여 얻는데 이는 내화(耐火 : refractory) 재료가 된다. 또한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한 백운석(白雲石)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이나 철도 밸러스트용(railway ballast)으로 사용하는 잘게 부서진 백운석(白雲石)(제2517호)이나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제3816호)는 제외한다.

25.19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2519.90 - 기타

이 호에 분류하는 마그네사이트(magnesite)[또는 지오버타이트(giobertite)]는 천연적으로 생긴 탄산마그네슘으로 불순물의 함유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천연 탄산마그네슘·염기성 탄산마그네슘·해수로부터 침전시킨 수산화마그네슘으로부터 얻은 마그네시아(magnesia)(산화마그네슘)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1) **용융(溶融) 마그네시아(fused magnesia)**. 이것은 용융(溶融)에 의하여 얻어지며 보통 무색이지만 약간 노란색이나 녹색을 띤 경우도 있다. 다른 형태의 마그네시아에 비하여 잘 녹지 않는 편이며 전기 오븐의 내화재나 도가니 제조에 사용한다.
- (2)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dead-burned or sintered magnesia)**. 이것은 고온(섭씨 약 1,400°C부터 1,800°C)으로 하소(煨燒)하여 얻는다. 소결(燒結)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결(燒結) 전에 첨가한 소량의 산화물(예: 산화철이나 산화크로뮴)을 함유하기도 한다. 내화(耐火)벽돌 제조에 사용한다.
- (3) **코스티번드마그네시아(caustic-burned magnesia)** : 보통 마그네사이트(magnesite)를 비교적 저온(섭씨 900°C 미만)에서 하소(煨燒)하여 얻으며 이것은 소결(燒結) 마그네시아나 용융(溶融)마그네시아보다 더 화학적 반응성이 강하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 혼합물이나 탈색제나 산염화물 시멘트의 제조에 사용한다.

경질(輕質)산화마그네슘과 중질(重質)산화마그네슘은 보통 순수한 침강성 수산화마그네슘이나 염기성탄산마그네슘을 섭씨 600°C부터 900°C까지의 온도에서 하소(煨燒)하여 얻는다. 이러한 산화마그네슘은 실질적으로 물에는 녹지 않지만 묽은 산(dilute acid)에는 잘 녹으며 다른 형태의 마그네시아(magnesia)[즉, 소결(燒結) 마그네시아와 용융(溶融) 마그네시아]보다 화학적 반응성이 강하다. 이들은 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a) 수화된(hydrated) 염기성탄산마그네슘은 때로는 “파마시스트 화이트 마그네시아(chemist's white magnesia)”라고 부른다(**제2836호**).
- (b) 산화마그네슘의 배양한 결정(광학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한 개의 중량이 2.5 g이상의 것(**제3824호**) ; 산화마그네슘의 광학소자(**제9001호**)

25.20 -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 -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2520.20 - 플라스터(plaster)

석고(gypsum) : 천연의 황산칼슘의 수화물이며 일반적으로 백색이고 부서지기 쉽다.

무수(無水)석고(anhydrite) : 천연의 황산칼슘의 무수물(無水物)이며 황산 제조나 특정 종류의 플라스터(plaster)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플라스터(plaster) : 하소(煨燒 : calcined)하여 부분적으로 탈수하거나 완전히 탈수한 석고로 구성된다.

석고(gypsum)의 특성은 하소(煨燒)한 경우는 함유한 수분의 일부를 상실하여 플라스터(plaster)를 형성한다는 점인데, 이 플라스터는 물과 혼합되면 단단하게 된다. 플라스터가 급속히 응고되지 않도록 때로는 하소(煨燒)한 석고에 소량의 응결 지연제를 첨가할 때도 있다.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석고를 하소(煨燒)하여 완전히 수분을 제거한 후 명반(alum)과 같은 촉진제(accelerator)를 소량 첨가한 경우도 있다(Keene's cement나 English cement). 이와 유사한 플라스터는 천연 무수(無數)석고에 명반을 첨가해서 제조한다. 이러한 조제 플라스터는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직물 완성가공(dressing)과 종이의 표면 완성가공(surfacing)에 사용하기 위하여 균일한 가루 모양으로 만든 플라스터
- (2) 착색 물질을 함유한 플라스터
- (3)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煨燒)하거나 미세분말화한 플라스터[촉진제(accelerator)나 지연제(retarder)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서는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을 제외한다(제3407호).

25.21 -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석회석 용제(融劑 : limestone flux) · 석회석(limestone)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을 분류하며, 보통 석회나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며 건축용이나 석비(石碑)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제 2515호나 제 2516호)**. 백운석(白雲石 : dolomite)은 **제 2518호**에 해당되며 초크(chalk)는 **제 2509호**에 해당된다.

석회석 용제(融劑)는 주로 철강공업에서 용제(flux)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토지 개량에 사용하는 가루(powder) 모양의 형태로 제시하는 이들 물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 밸러스트용(railway ballast)의 쇄석(碎石)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 2517호)**.

25.22 -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 생석회(生石灰)

2522.20 - 소석회(消石灰)

2522.30 - 수경성(水硬性) 석회

생석회(生石灰 : quicklime)(불순한 산화칼슘) : 점토를 전혀 함유하지 않거나 미량 함유한 석회석을 하소(煨燒 : calcined)하여 얻는다. 이는 물과 급속히 결합하여 상당한 열을 발산하며 소석회(消石灰 : slaked lime)(수산화칼슘)을 만든다. **소석회(消石灰)** : 보통 토지 개량과 제당 공업에 사용한다.

수경성 석회(水硬性 石灰 : hydraulic lime) : 점토를 다량(비록 보통 20% 미만이지만) 함유하는 석회석을 낮은 온도에서 하소(煨燒)하여 얻어지며 이는 물 밑에서 남게 된다. 수경성(水硬性) 석회는 물과 화합하지 않는 상당량의 석회석을 함유하고 있는 점이 천연 시멘트와 다르다.

이 호에는 순수한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제2825호)**.

25.23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슬래그(slag) 시멘트 · 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523.1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2523.21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523.29 -- 기타
- 2523.3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2523.9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는 천연의 상태나 인공적으로 혼합한 상태에서 적당한 비율의 점토(clay)를 함유하고 있는 석회석을 소성(firing)하여 만든다. 실리카(silica) · 알루미나(alumina) · 철과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재료가 첨가될 수도 있다. 소성 공정의 결과로 **클링커(clinker)**라고 하는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클링커(clinker)는 다시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잘게 부쇄 지는데, 이들은 시멘트의 물 속에서 경화되는 특성을 조정하는 첨가제와 촉진제(accelerator)를 섞는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요한 종류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중용(moderate) 포틀랜드 시멘트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와 같은 것이 있다.

이 호에는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슬래그(slag) 시멘트 · 슈퍼설페이트(supersulphate) 시멘트[용광로 슬래그(slag)에 소석고와 경화촉진제를 혼합하여 잘게 부순 것] · 포조라나 시멘트(pozzolana cement) · 로마 시멘트(Roman cement) 등과 앞에서 열거한 시멘트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의 시멘트는 착색될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시멘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특정 제품은 **제외한다**. 예로서 킨스 시멘트이나 잉글리쉬 시멘트(alumed plaster gypsum)(**제2520호**)와 포조라나 어스(pozzolana earth) · 산토리안 어스(santorin earth)와 가끔 천연 시멘트로 알려진 이와 유사한 물질(**제2530호**)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사용할 때에는 소량의 경화촉진제의 첨가가 필요한 미세하게 잘게 부서진 슬래그(slag)(**제2619호**) ; 그러나 곧 사용할 수 있도록 경화촉진제가 혼합되어 있는 슬래그(slag)는 이 호에 분류한다.
- (b) 치과용 시멘트와 뼈 형성용 시멘트(**제3006호**)
- (c) **제3214호**의 시멘트
- (d) 내화 시멘트와 모르타르[샤모트 어스(chamotte earth)나 다이ナス 어스(dinas eart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3816호**)
- (e) 비내화성 모르타르(mortar)와 콘크리트(**제3824호**)



[소호해설]

소호 제2523.21호와 제2523.29호

제2523.21호와 제2523.29호에 있어서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는 포틀랜드 클링커(Portland clinker)에 잘게 부수어 얻은 시멘트를 말한다(황산칼슘을 소량 첨가할 수도 있다). 포틀랜드 클링커와 황산칼슘에 대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포틀랜드 클링커는 주로 규산칼슘을 함유하는 제2523.10호(시멘트 클링커)의 물품을 말하며, 규산칼슘은 석회(CaO)와 실리카(silica)(SiO₂)에 이들 양보다 적은 양의 알루미나(Al₂O₃)와 산화철(Fe₂O₃)을 사전 계산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것을 열에 의하여 부분 용융(溶融 : fused)하여 얻으며 ; 그리고
- “황산칼슘”이란 석고(gypsum)와 그의 유도체(derivative)·무수석고(anhydrite)와 시멘트 제조에 적합한 그 밖의 황산칼슘을 포함한다.

25.24 - 석면

2524.10 - 청(靑)석면

2524.90 - 기타

석면(asbestos) : 특정의 암석류가 분해된 천연 광물성 물질이다. 이는 독특한 섬유 상태의 구조를 갖으며 ; 때로는 외관이 비단과 같고 여러 색조가 있다. 보통 백색이나 때로는 회색·녹색·청색이나 암갈색이며 주로 내열(內熱)과 내산성(耐酸性)의 성질이 있다.

청(靑)석면(crocidolite) : 리이베카이트(riebeckite)의 석면 형태이다. 이것은 고(high) 알칼리 내용물을 가진 산성 마그마암과 변성암 속에서 섬유다발의 형태로 관찰한다. 이것은 어두운 청색에서 검은 색이거나 어두운 녹색이며, 반투명한 것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불투명한 것까지 있다. 푸른 석면(blue asbestos)으로도 알려져 있는 청(靑)석면(crocidolite asbestos)은 큰 인장력(tensile strength)을 가지고 있으나 열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다른 형태의 석면보다 탄성 섬유가 적으며, 산(酸)에는 강하나 알칼리(base)에는 약하다. 이것은 석면의 가장 위험한 형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호는 암석 형태인 가공하지 않은(crude) 석면·원료 상태나 두들겨서 펴거나 세척한 섬유 상태의 것(길이 등급으로 선별했는지에 상관없다)·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가루(powder)와 석면 웨이스트(waste)에 적용한다. 이 호에는 보다 더 가공[카드(carded)·염색(dyed) 등]한 섬유상의 것과 석면의 완제품은 **제외한다(제6812호)**.

25.25 -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1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2525.20 - 운모 가루

2525.30 - 운모 웨이스트(waste)

운모(mica)[백운모(muscovite)·금운모(phlogopite)·흑운모(biotite) 등]는 천연규산 알루미늄의 착염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택이 있고, 투명하고 여러 색조의 유연한 시트(sheet)로 쉽게 쪼개지는 특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가공하지 않은 운모(crude mica) : 불규칙한 모양·크기와 두께의 운모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양(books)으로 덮여 있다.

(B) 운모 판(mica sheet) : 부수고 깎아 다듬은 편(books)을 갈라서 얻는다. 이 판(板)은 그 결정에서 얻은 것과 같이 불규칙한 다각형의 모양이며 그 언저리를 거칠게 정돈하여 사각(斜角)이 된다. 보통 그 두께는 20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에서 75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까지 다양하다.

(C) 쪼갠 운모(mica splittings) : 운모판(mica sheet)을 쪼개서 얻는다. 쪼갠 운모판과 같이 이들은 불규칙한 다각형의 모양이다. 그의 언저리는 거칠게 정돈된다.

이들은 다음 모양으로 시판된다.

(1) 콘덴서 필름(condenser film) : 보통 25에서 20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의 두께

(2) 쪼갠 것(splittings) : 보통 두께가 12에서 3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이며 단지 운모 조립 제조용에 사용한다[예: 마이카나이트(micanite)].

이 호에는 운모의 웨이스트(waste)와 가루(powder)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운모 시트(mica sheet)나 쪼갠 운모(mica splittings)를 절단(cutting-out)하거나 압형(die-stamping)하여 얻은 물품(제6814호나 제85류)과 응결[bonded(build-up)]한 파편 운모(예: micanite·micafolium)·펄프 운모(pulped mica)(재구성된 운모)로 만든 제품(제6814호)은 제외한다.

질석(蛭石 : vermiculte)(운모와 유사한 광물)과 진주석(perlite)·녹니석(綠泥石 : chlorite)[질석(蛭石)과 화학적으로 관련된 광물]은 제2530호에 해당한다.

25.26 -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10 -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2526.20 - 부수거나 가루인 것

천연 동석(凍石 : steatite)과 활석(talc)은 함수 규산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광물성 물질이다. 천연 동석(凍石)은 활석에 비하여 조밀하고 덩어리 모양이며 활석은 만지면 얽은 조각으로 떨어지며 보다 더 부드럽고 보다 더 미끈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천연 동석(凍石)** : 제2515호의 암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태를 만들거나 가공할 수도 있으며(제2515호의 해설 참조), 또한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가공하기도 한다. 비누석(soapstone)은 천연 동석(凍石)의 변종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활석(talc)** :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가공 처리하기도 하는데 석의 일반적인 형태는 가공하지 않은 모양이거나 가루 모양이다.

“프렌치 초크(French chalk)”라는 용어는 가루 형태의 여러 종류의 동석(凍石)이나 활석을 가리킨다.

이 호에는 동석(凍石)으로 만든 “재단사 초크(tailor's chalk)”는 **제외한다(제9609호)**.

[25.27]

25.28 -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오로지** 추출하거나 농축시킨 천연 붕산염광(natural borate mineral)[하소(煨燒 : calcined)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천연 붕산(natural boric acid)을 분류하는데 이 붕산은 특정 지방(Italian soffioni)의 토양에서 새나오는 천연의 증기를 농축한 후 물을 증발 제거하여 얻거나, 이 특정 지방의 지하자원에서 뽑아낸 물을 증발하여 얻는다. 그러나 건조 중량으로 계산하여 붕산(H_3BO_3)을 85%를 초과하여 함유한 붕산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810호)**.

여기에 분류하는 천연 붕산염(natural borate)은 다음과 같다.

- (1) **커어나이트(kernite)**나 **붕사(tincal)** : “천연 붕사(natural borax)”로 알려진 붕산나트륨이다.
- (2) **판더마이트 붕사(pandermite)** · **프리사이트(priceite)** : 붕산칼슘
- (3) **방붕산광(boracite)** : 염화붕산마그네슘

이 호에는 커어나이트(kernite)나 붕사(tincal)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얻은 붕산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 refined borax)]과 특정 소금호수의 착염수(錯鹽水 : complex brine)를 증발하여 얻은 붕산나트륨을 **제외한다(제2840호)**.

25.29 -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 장석(長石)

- 형석(螢石)

2529.21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2529.22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2529.3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장석(長石 : feldspar) · 백류석(白榴石 : leucite) · 하석(霞石 : nepheline) ·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 nepheline syenite) : 알루미늄과 알칼리나 알칼리 토류 금속의 규산착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업의 용제(融劑 : flux)로 사용한다. 장석질의 모래(feldspathic sand)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505호)**.

형석(螢石 : fluorspar나 fluorite) : 다양한 색조의 줄무늬를 가진 견고한 덩어리로 생성되는 천연 플루오르화칼슘이며 또한 여러 색조의 응결된 결정이다. ; 이는 주로 플루오르화수소산의 제조와 야금용의 용제(融劑 : flux)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광물을 파괴하여 그의 구성성분 입자로 만드는 열처리를 하여 얻은 형석(螢石 : fluorspar)을 포함하며 ; 이들 입자들은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체로 치는 방법으로 실리카(silica)부분을 제거한다.

이 호에는 귀석이나 반귀석의 형태인 장석(長石 : feldspar)이나 형석(螢石 : fluorspar)은 **제외한다(제71류)**.

25.30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 2530.1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530.2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 2530.90 - 기타

(A)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煨燒)하거나 상호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천연 운모 상태의 산화철

여기에 분류되는 색채(colour)는 보통 백색 광물성 물질이나 유색의 광물성 물질(특히 산화철)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점토이며 ; 이들은 그 색깔로 인해 일반적으로 안료로 사용한다.

그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오우커(ochre)**[황색·갈색·적색·스페인쉬(Spanish) 적색 등]
- (2) **시에나토(sienna)**[이탈리안 시에나(Italian sienna)(황갈색) ; 번트 시에나(burnt sienna)(오렌지 갈색) 등]
- (3) **엄버(umber)**[번트엄버(burnt umber)를 포함한다] : 갈색이나 암갈색
- (4) **블랙어스(black earth)**와 **천연 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Cassel and Cologne earth). **용해성**의 반다이크브라운은 조제 안료(顔料)로서 **제3206호**에 해당한다.
- (5) **베로나 어스(Verona earth)**와 **싸이프러스 어드(Cyprus earth)**(녹색)

하소(煨燒 : calcination)나 여러 가지 어스컬러(earth colour)의 상호 혼합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거나 물이나 기름 등에 분산물(dispersion)로 제시한 경우에는 **제32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철광(**제2601호**)과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화합철분의 함량이 70% 이상인 어스 컬러(earth colour)(**제2821호**)는 **제외한다**.

그러나 주로 방청 안료(anti-rust pigment)로 사용하는 **운모 상태의 산화철**은 천연적으로 산화철의 함량이 70% 이상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B) 해포석(海泡石 : meerschaum)(연마했는지에 상관없다)과 호박(琥珀 : amber) ; 해포석(海泡石)과 호박(琥珀)[판(板) 모양·막대(rod, 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한 것], 흑옥(jet)

- (1) **천연 해포석(海泡石 : meerschaum)** : 매우 가볍고 다공성(多孔性)의 마그네시아(magnesia)의 수화규산염이며 백색·황색·회색·핑크색으로 소아시아(Asia Minor)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산출된다. 이는 작은 조각(길이가 30cm 를 거의 초과하지 않는다)으로 얻으며 예비적으로 닦고 비비고 모(wool)로 연마하고 건조시키며(태양광선이나 건조기로 건조시킨다) 외관과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란넬(flannel)과 왁스(wax)로 더욱 연마한다.

응결 해포석(agglomerated meerschaum) : 천연 해포석(海泡石)의 깎아낸 부스러기와 웨이스트(waste)를 가열 하에서 접착제[기름·명반(alum) 등]로 응결시켜 얻는다. 이와 같이 얻는 판(板 : plate) 모양·막대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만** 이 호에 해당되며 성형한 후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 **호박(琥珀 : amber)** : 화석화된 수지(“succinite”나 “*Karabé*”로도 알려졌다)로 보통 노란색 으로부터 짙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다. **제0510호**에 분류한 고래(鯨)의 분비물인 용연향(ambergris)과 호박(琥珀)(amber나 succinite)을 혼동치 말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응결 호박(琥珀)(agglomerated amber나 ambroid) : 호박 웨이스트(waste)를 응결하여 형성된 불투명한 광물성물질로, 이 호에는 판(板) 모양·막대 모양과 이와 유사한 모양**만**이 해당되며, 성형한 후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3) **흑옥(jet)** : 갈탄(lignite)이 성형된 일종으로서 짙은 흑색이며 조각하기 용이하고 고도의 광택이 있다. 보석 제조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호의 취지에서는 귀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C)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하소(煨燒 : calcined)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산화스트론튬은 제외한다]

여기에는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천연 탄산스트론튬)와 주로 불순한 산화스트론튬으로 구성된 하소(煨燒)한 스트론티아나이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순수한 산화 스트론튬(pure strontium oxide)은 **제외한다(제2816호)**.

(D) 따로 분류하지 않은 광물과 도자(陶瓷)제품의 파편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천연의 황화비소(natural arsenic sulphide), 그 두 가지의 주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i) 계관석(realgar) : 성분이 이황화비소로서 맑은 적색이고, 불꽃 제조에 사용한다.
 - (ii) 옹황(orpiment) : 성분이 삼황화비소로서 밝은 황색이며, 페인트 제조에 사용한다.
- 또한 이 호에는 비소성 황철광(mispickel)(황비철광이나 철황아비화물)을 분류한다.
- (2) 명반석(alunite) : 명반(alum)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므로 명반석(alumstone)이라고 불린다. 이는 암석물질로서 적회색이나 황색이며 손가락을 오염시킨다.
- (3) 질석(蛭石 : vermiculite) : 운모(mica)와 유사한 광물로서 색조도 유사하나 보통 작은 플레이크(flake)의 형태이다; 또한 녹니석(綠泥石 : chlorite)과 진주암(眞珠巖 : perlite)은 질석(蛭石)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광물이다. 이 광물들은 가열하면 팽창하므로 열절연재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같이 팽창(또는 박리팽창)된 상태의 것은 **제6806호**에 해당한다.
- (4) 리다이트(lydite) : 대단히 단단하고, 거칠고, 치밀한 조직과 균일한 입자인 암흑색의 암석이며 산(酸)에 작용하지 않는다. 리다이트(lydite)석으로 만든 시금석(touchstone)(예: 귀금속 시험용)은 **제6815호**에 해당한다.
- (5) 천청석(天靑石)(celestite : 천연의 황산 스트론튬) ; 방해석(Iceland spar)(또는 calcite) · 산석(aragonite)(결정성 탄산칼슘) ; 레피돌라이트(lepidolite : 리튬운모)(리튬이나 칼륨의 플루오르화 규소알루미늄네이트) · 둔각석(鈍角石 : amblygonite)(알루미늄 인산염-리튬플루오르화물)

- (6) 정원토양(garden earth) · 히드토양(heath earth) · 소지토(marsh earth) · 니회토(marl) · 충적토(alluvium) · 부엽토(leaf mould) · 발굴된 토양과 하층토 : 농업용에 사용하나 제31류(비료)에서 제외한다. 이들 토양에는 천연상태의 질소·인이나 칼륨을 소량 포함하고 있는 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모든 종류의 굴착된 천연 모래는 **제외한다(제2505호)**.
- (7) 화산회(pozzolana) · 산토린(santorin) · 화산토(trass)와 유사한 토류(earths) :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므로 때로는 천연 시멘트라 칭한다.
- (8) 석회석(limestone)[인쇄 공업에 사용하는 “인쇄용 석(lithographic stone)”이라 칭하는 것](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
- (9) 깨진 도기 · 벽돌과 콘크리트의 깨진 조각
- (10)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 금속의 광(예: bastnasite · xenotime · gadolinite) : 우라늄이나 토륨을 주로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모나자이트(monazite)와 그 밖의 광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612호)**.
- (11) 법랑용(enamelling) 유백제(opacifier) : 지르콘(zircon) 모래를 처리(염산으로 정제·미분화)하여 얻는다.
- (12) 몰리브데늄(molybdenite)의 “정광(精鑛 : concentrate)”[몰리브데늄 광물을 세척하거나 분쇄(grinding)·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과 같은 물리적 처리와 비야금용(選浮)을 위하여 기름과 물을 날려 보내는 정도의 열처리]에 의하여 얻는다.
- (13) 뉴스타이트(nsutite) : 야금(冶金) 공업에서 망간의 추출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건전지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산화망간을 79% 이상 함유하는 망간광
- (14) 천연 빙정석(氷晶石 : cryolite)은 주로 그린랜드에서 얻으며 은백색(snow-white)이고 때로는 옅은 색채가 있고 광택이 있으며 거의 투명하다. 이는 특히 알루미늄 전해 제조의 용제(融劑 : flux)로 사용하며 ;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는 빙정석(氷晶石)과 유사하고 주성분이 불화알루미늄나트륨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 호에는 빙정석(氷晶石)과 치올라이트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화학적으로 합성된 플루오르화물은 **제외한다(제2826호)**.

이 호에는 **제71류**의 귀석이나 반귀석은 **제외한다**.

제 26 류

광(鑛) · 슬래그(slag) · 회(灰)

주: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슬래그(slag)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담(macadam)(제2517호)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2519호)
 - 주로 제2710호의 석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 저장탱크에서 나온 슬러지(sludge)
 - 제31류의 염기성 슬래그(slag)
 -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이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wool)(제6806호)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112호나 제8549호)
 -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구리 · 니켈 · 코발트의 매트(mat)(제15부)
-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서 “광(鑛)”이란 수는, 제2844호의 금속, 제14부나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冶金)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화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 채취용에 실제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는 야금(冶金)공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
 - 비소를 함유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다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비소나 다른 금속 채취용이나 이들 화합물 제조용의 것



소호주:

- 소호 제2620.21호에서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란 유연(有鉛) 가솔린과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예: 테트라에틸납)의 저장탱크에서 얻는 슬러지(sludge)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납, 납 화합물과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다.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은 소호 제2620.60호로 분류한다.

총설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는 다음과 같은 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 concentrate)에 **한정한다**.

(A) 제14부나 제15부에 열거한 금속·수은이나 제2844호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冶金) 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그리고**

(B) 야금(冶金)공업상의 특수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

"**광(鑛 : ores)**"이란 광물에서 채취 하거나 정광(精鑛)한 물질과 관련된 금속광에 적용되며, 맥석에 있는 천연금속에도 적용된다[예: 금속사(砂)].

광(鑛)은 야금(冶金)조작 이전에 "처리(preparation)"하지 않은 상태로는 거의 시판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처리공정은 광(鑛)을 정광(精鑛)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 있어서 "**정광(精鑛 : concentrate)**"이란 경제적 수송 면에서나, 야금(冶金)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질이 있어, 특별 처리를 하여 이물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한다.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의 물품에 허용되고 있는 처리공정은 야금(冶金)용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 처리, 물리-화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이다. 열처리(calcination, roasting or firing)(응결했는지에 상관없다)에서 오는 변화를 제외하고 이 같은 조작은 필요로 하는 금속을 공급하는 기초적 화합물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물리적 처리나 물리-화학적 처리는 잘게 부수기(crushing)·뿜기(grinding)·자기선광(磁氣選鑛 : magnetic separation)·비중선광(gravimetric separation)·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체(사)로 분리(screening)·등급별로 분리(grading)·가루를(예: 소결이나 몽치기에 의해 알갱이나 불 모양이나 브리켓(briquette) 모양으로 응집(소량의 접착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건조·하소(calcination)·배소(roasting)[광(鑛) 등을 산화·환원·자성화하기 위해서이다] 등을 포함한다(황산화·염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배소(roasting)를 제외한다).

화학적 처리는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예: 용해(dissolution)].

화학성분이나 결정구조를 변화시키는 하소(煨燒)나 배소(焙燒)를 제외한 처리로 얻어진 정광(精鑛)을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제28류**). 또한 원광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분별결정·승화 등의 반복되는 물리적 변화로 얻어지는 순수한 물품을 **제외한다**.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의 광(鑛)은 상관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

- (1) 제71류에 분류한 귀금속(예: 은·금·백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과 루테튬)
- (2) 제15부에 관련된 야금(冶金)용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즉, 철·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zirconium)·안티모니·망간·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베릴륨(글리시늄)·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
- (3) 제2805호의 수은
- (4) 제2844호의 금속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광(鑛)은 페로-망간이나 페로-크로뮴과 같은 합금을 얻는데 사용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 이상의 광물 족으로 구성된 광석과 그 정광(精鑛)은 통칙 제3호나목에 의해 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 다목의 적용에 의해서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 중에서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다음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금속을 함유하는 광물
 - (i) 다른 호에 분류한 것. 예: 베소(焙燒)하지 않은 황화철광(**제2502호**), 천연 크리오라이트(cryolite)와 천연 치오라이트(chiolite)(**제2530호**)
 - (ii) 금속을 상거래 관습상 채취하지 않는 것. 예: 어스컬러(earth colour)·명반석(alunite or alumstone)(**제2530호**), 귀석이나 반귀석(**제71류**)
 - (b) 마그네슘을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광물, 예: 백운석(白雲石 : dolomite)(**제2518호**), 마그네사이트(magnesite)나 지오버타이트(giobertite)(**제2519호**)과 카아닐라이트(carnallite)(**제3104호**)
 - (c) 제2805호에 해당되는 알카리 광물이나 알카리토류 금속광물(즉, 리튬·나트륨·칼륨·루비듐·세슘·칼슘·스트론튬과 바륨) ; 이러한 광물은 염(**제2501호**), 중정석(重晶石)(baryte)과 독중석(毒重石 : witherite)(**제2511호**),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천청석(celestite)·방해석(Iceland spar)과 산석(aragonite)(**제2530호**)을 포함한다.
 - (d) 맥석(gangue)이나 모암(matrix)에서 분리된 천연 금속[예: 너겟(nugget) 모양이나 알갱이(grain) 모양의 것]과 천연 합금(그들의 천연 금속과 천연 합금이 **제14부**나 **제15부**에 분류되는 것)
 - (e) **제2530호**의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 금속의 광
-

26.01 -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 응결시키지 않은 것

2601.12 -- 응결시킨 것

2601.2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적(赤)철광(red haematite) : 경철광(specular iron ore)과 마르타이트(martite)(산화철)과 갈철광[brown haematite(minette)](철과 칼슘의 탄산염을 내포하고 있는 함수산화철)을 포함한다.
- (b) 갈철광(limonite) : 함수 산화철
- (c) 자(磁)철광(magnetite) : 자성(magnetic) 산화철
- (d) 능철석(siderite or chalybite) : 탄산철
- (e) 배소한 황화철광 또는 황철광의 배소재(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건조 중량으로 계산한 망간의 함유량이 20% 미만인 망간 철광과 그 정광(精鑛) [섭씨 105°C에서 110°C의 범위 내로 가열한 광(鑛)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하며(제2602호 해설 참조) ; 이들 광(鑛)은 망간의 함유량에 따라 망간 철광으로 알려지거나 철망간광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안료용(pigment)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곱게 가루로 한 자철광(magnetite)과 그 밖의 곱게 가루로 한 철광(iron ore)은 **제외한다(제32류)**.

26.02 -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갈망간광(braunite) : 산화망간
- (b) 능망간광(rhodochrosite)(또는 dialogite) : 탄산망간
- (c) 하우스망광(hausmannite) : 함유 산화망간
- (d) 수망간광(manganite) : 함유 산화망간
- (e) 경망간광(psilomelane) : 함유 이산화망간
- (f) 연망간광(pyrolusite)(또는 polianite) : 이산화망간

이 호에는 또한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 : concentrate)을 포함하며, 건조 중량으로 계산한 망간의 함유량이 20% 이상의 것[섭씨 105°C에서 110°C의 범위 내로 가열한 광(鑛)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하며 ; 건조 중량으로 계산한 망간의 함유량이 2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제2601호)**.

이 호에는 또한 건전지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연망간광(pyrolusite)은 **제외한다(제2530호)**.

26.03 - 구리광과 그 정광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녹염동광(atacamite) : 천연 히드록시 염화구리
- (b) 남동광(azurite) : 염기성 탄산동
- (c) 반동광(bornite나 erubescite) : 구리과 철의 황화물
- (d) 차콜광(bournonite) : 구리·납과 안티모니의 황화물
- (e) 수등반(brochantite) : 염기성 황산구리
- (f) 휘동광(chalcocite) : 구리의 황화구리
- (g) 황동광(chalcopyrite)(copper pyrites) : 구리와 철의 황화물
- (h) 규공작석(chrysocolla) : 함수 규산구리
- (ij) 코벨라이트(covellite) : 황화구리
- (k) 적동광(cuprite) : 산화제일구리
- (l) 취동광(dioptase) : 규산구리
- (m) 회동광(grey copper ore)(간혹 은을 함유한다) : 구리와 안티모니의 황화물(tetrahedrite
이나 fahlerz)이나 구리와 비소의 황화물(tennantite, enargite)
- (n) 공작석(malachite) : 염기성 회산동
- (o) 흑동광(tenorite) : 산화 제이구리

26.04 -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구니켈광(garnierite) : 니켈과 마그네슘의 규산 겹염
- (b) 홍비니켈(niccolite)(nickelin) : 비화니켈
- (c) 황철니켈광(pentlandite) : 니켈과 철의 황화물
- (d) 니켈철 자황철광(nickeliferous pyrrhotite) : 니켈을 함유하는 황화철

26.05 -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휘코발트광(cobaltite) : 코발트의 비화물과 황화물
- (b) 헤테로게나이트(heterogenite) : 함수(含水) 산화 코발트
- (c) 황코발트광(linnaeite) : 코발트와 니켈의 황화물
- (d) 비코발트광(smaltite) : 비화코발트

26.06 -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는 보크사이트(bauxite)[일정하지 않은 비율의 산화철·실리카(silica) 등을 내포하는 함수 산화알루미늄]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루미늄 제조의 야금(冶金)용[전기로·그로스(Gross)·그 밖의 과정에서의 탄소-열-환원(carbo-thermo-reduction)이나 그 밖의 용도[특히, 연마제(abrasive)의 제조]에 적합하도록 섭씨 1,200°C~1,400°C로 열처리한 보크사이트를 포함한다.

26.07 - 납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황산연광(anglesite) : 황산납
- (b) 백연광(cerussite) : 탄산납
- (c) 방연광(galena) : 황화납(간혹 은을 함유한 것)
- (d) 녹연광(pyromorphite) : 인산납과 염화납

26.08 -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섬아연광(blende)(sphalerite) : 황화아연
- (b) 이극광(hemimorphite)(또는 calamine) : 규산수소아연
- (c) 능아연광(smithsonite) : 탄산아연
- (d) 홍아연광(zincite) : 산화아연

26.09 -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주석광(cassiterite)[또는 주석석(tin-stone)] : 산화주석
- (b) 황석광(stannite)(또는 tin pyrites) : 주석 · 구리 · 철의 황화물

26.10 -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는 크로뮴철광(chromite 또는 chrome iron ore), 즉, 크로뮴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한다.

26.11 -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철중석(ferberite) : 텅스텐산 철
- (b) 망간중석(hubnerite) : 텅스텐산 망간
- (c) 회중석(scheelite) : 텅스텐산 칼슘
- (d) 철망간중석(wolframite) : 철과 망간의 텅스텐산염

26.12 -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 -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2.20 -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중요 우라늄 광(ore)은 다음과 같다.

- (a) 인회우란광(autunite) : 우라늄과 칼슘의 합수 인산염
- (b) 브라넬석(brannerite) : 티탄산 우라늄
- (c) 카르노(carnotite) : 우라늄과 칼륨의 바나딘 합수 산염
- (d) 코핀석(coffinite) : 우라늄 실리케이트(silicate)
- (e) 다비토석(davidite) : 우라늄 철티탄산염
- (f) 팔손즈광(parsonsite) : 우라늄과 납의 합수 인산광
- (g) 역청우란광(pitchblende and uraninite) : 함유 산화 우라늄
- (h) 톨벨석(torbernite)(또는 chalcocite) : 우라늄과 구리의 합수 인산염
- (ij) 차문석(tyuyamunite) : 우라늄과 칼슘의 바나딘 합수 산염
- (k) 우라노폰석(uranophane) : 칼슘우라늄 실리케이트(silicate)
- (l) 우란톨루석(uranothorianite) : 우라늄과 토륨의 산화물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토륨광은 다음과 같다.

- (a) 모나자이트(monazite) : 토륨과 희토류(稀土類 : rare earths)의 인산염
- (b) 토륨광(thorite) : 합수 규산토륨

이 호에는 야금(冶金) 공업용을 위한 특수처리 과정이 아닌 방법으로 얻는 상거래 관습상 우라늄 “정광(精鑛)”으로 알려진 물품은 **제외한다(제2844호)**.

26.13 -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 - 배소(焙燒)한 것

2613.90 - 기타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몰리브덴광은 다음과 같다.

(a) 휘수연광(molybdenite) : 황화몰리브데늄

(b) 수연연광(wulfenite) : 몰리브데늄산 납

이 호에는 또한 배소(焙燒 : roasted)한 몰리브데나이트(molybdenite) 정광[몰리브데나이트 정광(精鑛)을 단순히 배소(焙燒)해서 얻은 "공업용 산화 몰리브덴(technical molybdc oxide)"]을 분류한다.

다만, 윤활제(lubricant)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된 몰리브데나이트는 **제외한다(제2530호)**.

26.14 -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鑛 : ore)은 다음과 같다.

(a) 일메나이트(ilmenite)(또는 티탄철광) : 티탄산철

(b) 금홍석(rutile) · 예추석(anatase) · 브루카이트(brookite) : 산화티타늄

이 호에는 안료(顔料)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세분말화한 티타늄(titanium)광석을 **제외한다(제32류)**.

26.15 -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5.90 - 기타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지르코늄 광(鑛 : ore)은 다음과 같다.

- (a) 바델라이트광(baddeleyite) : 산화 지르코늄
- (b) 지르콘(zircon)과 지르콘사(zircon sand) : 규산지르코늄(지르콘이 귀석의 형태일 때는 **제7103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탄탈륨과 니오븀(콜럼븀)광은 탄탈라이트(tantalite)와 니오바이트(niobite)(columbite)[즉, 철 · 망간의 탄탈로-니오베이트(tantalo-niobate)]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바나듐광은 다음과 같다.

- (a) 데스클로이석(descloizite) : 염기성 납과 아연의 바나듐 산염
- (b) 파트론석(patronite) : 황화바나듐
- (c) 로즈콜석(roscoelite)(vanadium mica) :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바나도-실리케이트의 착염
- (d) 갈연광(vanadinite) : 납의 바나듐산염과 염화물

하소(煨燒)하거나 배소(焙燒)한 것을 제외하고 원광의 화학조성이나 결정학상 구조를 변화시키는 처리로 얻는 용융(溶融)산화 바나듐은 **제외한다**(보통 **제28류**).

에나멜공업에 있어서 유백제(opacifier)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분화한 지르콘 모래는 **제외한다(제2530호)**.

26.16 -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 - 은광과 그 정광(精鑛)

2616.90 - 기타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鑛 : ore)은 다음과 같다.

- (a) 휘은광(argentite) : 황화은
- (b) 칼라버라이트광(calaverite) : 금과 은의 텔루르화물
- (c) 작은광(cerargyrite나 horn silver) : 염화은과 옥화은
- (d) 휘안은광(polybasite) : 은과 안티모니의 황화물
- (e) 담홍은광(proustite) : 은과 비소의 황화물
- (f) 농홍은광(pyrrargyrite) : 은과 안티모니의 황화물
- (g) 취은광(stephanite) : 은과 안티모니의 황화물
- (h) 금과 백금을 함유하는 모래 ; 후자는 백금족의 그 밖의 금속(즉, 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과 루테튬)을 함유하는 경우도 많다.

26.17 -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2617.90 - 기타

이 호에 보통 분류하는 주요 광(鑛 : ore)은 다음과 같다.

(1) 안티모니광

- (a) 세르반타이트(cervantite) : 산화안티모니
- (b) 커머사이트(kermesite) : 안티모니 옥시 황화물
- (c) 세나르몬타이트(senarmontite) : 산화안티모니
- (d) 스티브나이트(stibnite)(또는 antimonite) : 황화안티모니
- (e) 발렌틴광(valentinite나 white antimony) : 산화안티모니

(2) 베릴륨(beryllium)광

- (a) 녹주석(beryl) : 베릴륨과 알루미늄의 규산결염(귀석의 형태인 경우는 녹주석이나 보통의 에메랄드는 **제7103호**에 해당한다)
- (b) 버어트런다이트(bertrandite)

(3) 비스무트(bismuth)광

- (a) 휘창연광(bismuthinite)(또는 bismuth glance) : 황화비스무트
- (b) 포창연(bismutite) : 함수 탄산 비스무트
- (c) 창연자(bismuth ochre)(또는 bismite) : 함수 산화 비스무트

(4) 게르마늄(germanium)광

황비게르만동광(germanite) : 구리 게르마늄의 황화물

이 호에는 야금(冶金) 공업용을 위한 특수 처리과정이 아닌 방법으로 얻은 상거래 관습상 게르마늄 “정광(精鑛)”으로 알려진 물품은 **제외한다**(보통 **제2825호**).

(5) 수은(mercury)광

주사(朱沙 : cinnabar) : 수은의 황화물

인듐·갈륨·레늄·하프늄·탈륨과 카드뮴은 일종의 특정 광(鑛)에서 직접 채취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금속(예: 아연·납·구리·알루미늄·지르콘과 몰리브덴)들의 야금(冶金)공업에서 부산물로 얻는다.

26.18 -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이 호에는 용광로에서 액체 상태 드로스를 옮겨 물속에 부어 넣음으로써 얻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를 분류한다.

한편 용융(溶融 : molten) 슬래그(slag)에 소량의 물을 가하여 만든 거품 형태의 슬래그(slag)와 용융(溶融) 슬래그에 압축 공기나 증기를 통하여 얻은 슬래그울(slag wool)은 **제외한다(제6806호)**. 또한 이 호에는 슬래그 시멘트도 **제외한다(제2523호)**.

26.19 -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이 호에 분류하는 슬래그(slag)는 알루미늄 · 칼슘이나 철의 규산염으로 철광의 용해[고로(高爐) 슬래그] · 선철의 정제나 철강의 제조(전로 슬래그) 공정 중에서 얻는다. 이 호에는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슬래그(slag)를 포함한다. 그러나 인산 슬래그["베이직 슬래그(basic slag)"나 "토마스 슬래그(Thomas slag)"]는 **제외하며** ; 중요한 비료로 **제31류**에 분류한다.

슬래그(slag)와 드로스(dross)는 시멘트 제조 · 밸러스트(ballast)와 도로 건설에 사용한다. 머캐덤(macadam)과 같은 거칠게 부순 등급의 슬래그는 **제251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는 **제외한다(제2618호)**.

스케일링(scaling)은 산화철의 칩(chip)으로서 철강의 단조 · 열간압연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또한 이 호에는 용광로에서 생긴 더스트(dust)와 철강을 제조할 때에 생긴 그 밖의 종류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그러나 절단 · 조형이나 그 밖의 금속가공 공정에서 생긴 금속 스크랩(scrap)은 **제7204호**에 해당한다.

26.20 -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2620.19 -- 기타

-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2620.29 -- 기타

2620.3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620.4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620.6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 기타

2620.91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620.99 -- 기타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 ash), 잔재물(제2618호·제2619호나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화학적 공정이거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나온 웨이스트(waste)나, 중고 금속제품이나 부서진 금속제품으로 구성된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14부, 제15부나 제16부). 한편, 비철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산화물인 스케일링(scalings)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매트(matte)[제15부에 해당하는 구리 매트(copper matte)·니켈 매트(nickel matte)나 코발트 매트(cobalt matte)를 제외한다]와 슬래그(slag)나 드로스(dross) : 예를 들어 구리·아연·주석·납 등의 함유량이 풍부한 것
- (2) 경(硬 : hard) 아연의 스펠터(spelter) : 용융(溶融 : molten) 아연조에서 도금하고 남은 잔재물
- (3) 침적물(sludge) : 금속의 제조나 제련(refining) 후 전해조(electrolytic bath)에서 발생한 침적물과 전기도금(electro-galvanising)에서 생긴 것
- (4) 축전지 침적물(accumulator sludge)
- (5) 금속의 전해제련(electrolytic metal refining)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재물로서 건조나 농축한 블록 모양의 것

- (6) 황산구리 제조과정의 잔재물
- (7) 불순한 산화코발트 잔재물 : 은광석을 처리 할 때 발생하는 것
- (8) 사용한 촉매 : 금속 추출이나 화공약품 제조에만 사용하는 것
- (9) 카아날라이트 라이(carnallite lye) 잔재물 : 주로 염화마그네슘 제조에 사용하는 것
- (10) 유연(有鉛 : leaded)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슬러지(sludge) : 유연(有鉛) 가솔린과 안티녹(anti-knock)의 저장탱크로부터 얻어진 이들은 주로 납·납화합물(테트라에틸납과 테트라메틸납을 포함한다)과 산화철(저장탱크의 녹에서 나온 것)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슬러지(sludge)는 납이나 납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석유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 (11) 아연·납이나 구리의 제련(smelting)으로부터 생성된 연진(煙塵 : flue dust) : 일반적으로 비소는 구리와 납의 제련에서 생성된 연진(煙塵) 속에 존재하며, 탈륨은 납과 아연의 제련에서 생성된 연진(煙塵) 속에 존재한다.
- (12) 아연·납이나 구리의 제련으로부터 생성된 슬래그(slag)·회(灰 : ash)와 잔재물 : 일반적으로 산화물·황화물이나 다른 금속과의 아말감(amalgam)으로서 존재하는 수은의 함유량이 많은 것이다.
- (13) 안티모니(antimony)·베릴륨(beryllium)·카드뮴(cadmium)·크로뮴(chromium)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슬래그(slag)·회(灰)와 잔재물 : 일반적으로 이들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물품을 가공(예: 열처리)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
- (14) 슬래그(slag)·회(灰)와 잔재물 : 잉크·염료·안료(顔料)·페인트·래커(lacquer)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waste)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금속과 그들의 화합물의 재생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생활 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
- (b) 석유저장탱크로부터 나온 슬러지(sludge)로서, 주로 석유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것(**제2710호**)
- (c) **제28류**에 해당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 (d)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예를 들어, 백금합금 거어즈(gauze) 형태의 닳거나 손상된 촉매 등을 포함한다]과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112호**나 **제8549호**)
- (e) **제15부**의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속 스크랩(scrap)
- (f) 아연 더스트(zinc dust)(**제7903호**)

26.21 -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90 - 기타

이 호에는 광(ore)의 처리공정이나 야금(冶金)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 : ash) (**제2618호·제2619호나 제262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분류하며 그 밖의 물질이나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도 분류한다. 대부분의 물품이 비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고 제31류에 분류하지 않는다(염기성 슬래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주로 석탄(coal)·갈탄(lignite)·토탄(peat)이나 기름을 산업용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생산되는 광물의 회(灰)와 클링커(clinker). 이 물품은 주로 시멘트 제조용 원료·콘크리트와 광산 뒤 채움용 시멘트 첨가제·플라스틱과 페인트의 광물성 충전제·빌딩 블록 제작과 제방·고속도로 경사로와 교량지대 같은 도시 공학 구조물의 가벼운 골재로 사용한다.
 - (a) 플라이 회(灰)(fly ash)-로(爐)의 연도 가스로부터 날아서 흩어지거나 백(bag)이나 정전기 필터에 의해 가스 흐름으로부터 제거된 미세하게 분리된 입자 ;
 - (b) 보텀 회(灰)(bottom ash)-로(爐)에서 옮겨진 뒤 즉시 가스 흐름으로부터 침강에 의하여 제거된 보다 굵은 회(灰) ;
 - (c) 보일러 슬래그(boiler slag)-로(爐)의 바닥에서 제거한 굵은 잔재물 ;
 - (d) 유동층 연소로 회(灰)[FBC(fluidised bed combustor) 회(灰)]-석회석이나 백운암의 유동층 속의 석탄이나 기름을 연소하여 얻은 무기 잔재물
- (2) 해초의 회(灰)와 그 밖의 식물의 회(灰) : 이 호에 분류한 해초회(灰)(kelp)는 특정 형태의 해조류를 태워서 얻은 물질이다. 원래 상태에서는 무겁고 거칠며 흑색의 물질이나 정제하면 무광의 백색 분말이다. 주로 요오드의 채취나 유리공업에 사용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벼의 외피회(灰)를 포함하며 이는 대부분 규조토로 구성되어 있고 방음용 벽돌이나 그 밖의 방음용 물품 제조에 사용한다.
- (3) 골회(bone ash) : 대기에서 뼈를 하소(煨燒 : calcination)하여 얻은 것. 이 물품은 토양 개량용에 사용하는 외에 구리 용융에서 잉곳(ingot) 주형 피복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밀폐한 용기에서 뼈를 하소(煨燒)하여 얻은 동물성 골탄은 **제외한다(제3802호)**.
- (4) 제당공업에서 사탕무 당밀의 찌꺼기를 소각·세척해서 얻는 조(粗)칼륨염
- (5) 생활 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제38류의 주 제4호 참조) : 이런 회(灰)와 잔재물은 흔히 클링커(clinker)와 유독성 금속(예: 납)의 혼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매립식 쓰레기 처리지역의 임시도로 건설에 골재 대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종류의 회(灰)와 잔재물은 금속이나 금속화합물을 회수할 정도의 양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이 호에서는 실리콘·페로실리콘과 지르코니아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수집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실리카 폼(silica fume : 건식법으로 만들어진 실리카 미립자의 한 종류)은 **제외한다(제2811호)**. 이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concrete)·섬유 시멘트(fibre cement)나 캐스터블 내화물(refractory castable)에서 포졸란(pozzolan) 첨가제로, 폴리머(polymer)에서 첨가제로 사용한다.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은 제외한다)
 - 나.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 다. 제3301호, 제3302호,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3. 제2710호에서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주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른 석유와 역청유를 함유하는 폐유(廢油)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 가.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油壓油)와 절연유(絶緣油)]
 - 나. 석유 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로서 석유와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 다.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切削油)와 같이 물에 유화(乳化)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소호주: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3. 소호 제2707.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제2707.40호에서 “벤조올(벤젠)”·“톨루올(톨루엔)”·“크실렌(크실렌)”·“나프탈렌”은 각각 벤젠·톨루엔·크실렌·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총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 그 밖의 천연 광물성 연료·석유·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이들의 증류물과 그 밖의 제조 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또한 광물성 왁스와 천연 역청(瀝靑)물질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나 정제한 것일 수도 있다. ; 그러나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 이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의 유기화합물이거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것이라면 **제29류**에 분류한다. 이들 중 특정의 화합물(예: 에탄·벤젠·페놀·피리딘)은 제2901호·제2907호·제2933호의 해설서에 순도를 규정하고 있다.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2711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제2707호에 사용한 “방향족(芳香族 : aromatic) 성분”이라는 표현은 측쇄의 수와 길이에 관계없이 방향족(芳香族)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자의 방향족(芳香族)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 (b) 조제향료와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 (c)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 cm³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 연료나 액화가스 연료(**제3606호**)

27.01 -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 -- 무연탄

2701.12 -- 유연탄

2701.19 -- 그 밖의 석탄

2701.20 -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이 호에서는 잘게 부수거나 응결[조개탄(ovoid)·연탄 등]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 형태의 석탄(coal)과 무연탄(anthracite)을 분류한다. 또한 무연화시켜 탄화된 연탄과 이와 유사하게 제조된 연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물에 분산되어 있는 가루로 된 석탄[슬러리(slurry) 석탄]으로서 소량의 분산제(특히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흑옥(jet)(제2530호)·갈탄(lignite)(제2702호)·석탄코크스(coke of coal)·반성(半成)코크스(semi-coke of coal)(제2704호)를 제외한다.

27.02 -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2.20 - 응결시킨 갈탄

이 호에서는 갈탄[lignite(brown coal)]을 분류하는데 이는 석탄(coal)과 토탄(peat)의 중간 위치에 있는 연료로서 탈수한 것 · 잘게 부순 것 ·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서는 갈탄의 일종인 흑옥(jet)을 **제외한다(제2530호)**.

27.03 -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토탄(peat)은 식물성 물질이 부분 탄화하여 형성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가볍고 섬유질이다.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토탄을 분류하는데,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나 응결 토탄·안정제·토지 개량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는 잘게 부순 토탄과 토탄 찌꺼기 등을 포함한다.

토탄에 모래나 점토를 혼합한 것으로서, 토탄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하며, 비료 요소인 질소·인·칼륨을 소량으로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화분용 흙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직물용으로 조제된 토탄섬유[“베란딘(berandine)”으로 알려진 것](**제11부**)

(b) 토탄으로 만든 화분(花盆 : flower pot)이나 그 밖의 제품(절단하거나 성형하여 얻은 건축용 절연시트를 포함한다)(**제68류**)

27.04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코크스(coke)는 석탄·갈탄·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는 탄화하거나 가스화)하여 얻은 고체 형태의 잔유물이다. 이것은 코크스 노(爐) 내의 여러 가지 품질의 유연탄에서 얻어진다.

반성(半成) 코크스(semi-coke)는 석탄이나 갈탄을 저온에서 증류하여 얻는다.

이 호의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는 잘게 부수거나 응결시키는 경우도 있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가스 탄소)은 단단한 흑색으로 부서지기 쉬운 탄소 형태이며, 두드리면 금속성 소리가 난다. 이는 가스공업에서나 코크스 노(爐)에서 노(爐)나 레토르트의 벽에 부착되는 경우 그 부산물로 얻어진다. 이 탄소는 보통 불규칙한 덩어리로 구성되는데 레토르트의 모양에 따라 그 면이 평면이거나 약간 굴곡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을 “인조 흑연(artificial graphite)”이라고도 하나 이 명칭은 **제3801호**에 해당하는 인공 생산된 흑연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피치코크스와 석유코크스(각각 **제2708호**와 **제2713호**)

(b) 전기(電氣)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레토르트의 카본(retort carbon) 제품(**제8545호**)

27.05 -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석탄 가스(coal gas)는 보통 가스 공업이나 코크스노(爐 : oven)에서 공기를 차단하여 석탄을 증류하여 얻는다. 이는 수소·메탄(methane)·일산화탄소 등의 복합 혼합물로 빛이나 열을 내는데 사용한다.

이 호는 지하가스화법(underground gasification)에서 얻은 가스와 수성(水性)가스·발생로 가스(發生爐 가스 : producer gas)와 이와 유사한 가스(예: 용광로 가스)를 포함한다. 또한 보통 수증기 존재 하에서 광물유(鑛物油 : mineral oil)·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분해하거나 개량하여 생긴 혼합 가스도 분류한다. 이들 혼합 가스는 석탄가스와 조성이 유사하며, 열이나 빛을 내는데 사용하며, 화학물질(예: 메탄올·암모니아) 합성에 사용한다(후자의 경우에 이들은 때로 합성가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2711호**에 열거한 가스를 **제외한다**.

27.06 -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이 타르(tar)들은 방향족(芳香族)과 지방족(脂肪族)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갖는 복합 혼합물이며 보통 석탄·갈탄이나 토탄을 증류하여 얻는다.

이 호는 다음의 모든 타르(tar)를 분류한다.

- (1) 석탄을 고온으로 증류하여 생산한 타르 : 이는 주로 벤젠·페놀·나프탈렌·안트라센과 페놀 동족체·피리딘염기 등의 방향족(芳香族)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갈탄을 증류하거나 토탄을 증류하거나 석탄을 저온으로 증류하여 얻은 타르 : 이 타르들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언급한 타르와 유사하나 대부분 지방족·나프텐과 페놀 화합물을 다량으로 함유한다.
- (3) 그 밖의 광물성 타르 : 석탄의 기화(gasification) 중에 수성(水性)가스 발생로(發生爐)(water gas producer)에서 얻은 타르들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탈수나 부분 증류한 타르와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하며, 이들 타르는 피치(pitch)에 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 그 밖의 콜타르(coal tar) 증류물을 혼합하여 얻은 것이다.

타르는 주로 일련의 오일과 그 밖의 콜타르(coal tar)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더욱 더 증류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방수 재료와 도로 포장재료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비(非) 광물성 원료(non-mineral source)에서 추출된 타르는 **제외한다**[예: 목 타르(wood tar)] (**제3807호**).

27.07 -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 - 벤조올(벤젠)

2707.20 - 톨루올(톨루엔)

2707.30 - 크실올(크실렌)

2707.40 - 나프탈렌

2707.5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TM D)86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5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2707.91 -- 크레오소트(creosote)유

2707.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오일과 그 밖의 물질 : 콜타르(coal tar)를 고온으로 증류하여 얻으며 다소 증류 범위가 넓고 주로 방향족(芳香族 : aromatic) 탄화수소와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화합물로 구성되는 혼합물을 만든다.

이 오일과 그 밖의 물질은 다음의 물질을 포함한다.

- 벤조올(벤젠) · 톨루올(톨루엔) · 크실올(크실렌)과 용제 나프타
- 나프탈렌유와 가공하지 않은 나프탈렌
- 안트라센유와 가공하지 않은 안트라센
- 페놀유(페놀 · 크레졸 · 크실레놀 등)
- 피리딘(pyridine) · 퀴놀린(quinoline)과 아크리딘(acridine)염기
- 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

- (2) 유사한 오일과 물질 : 방향족(芳香族)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질으로 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를 저온으로 증류 · 석탄가스의 정제 · 석유공정이나 그 밖의 처리를 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오일과 물질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이 포함하나, 타르유(tar oil)의 그 밖의 처리나 그 이상의 분류에 의하여 얻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화합물이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9류)**. 벤젠 · 톨루엔 · 크실렌 · 나프탈렌 · 안트라센 · 페놀 · 크레졸 · 크실레놀 · 피리딘과 피리딘의 유도체는 제2902호 · 제2907호 · 제2933호의 해설의 해당 부분에 순도가 정해져 있다.

목타르유(wood tar oil)는 **제38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혼합 알킬벤젠이나 혼합 알킬나프탈렌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벤젠이나 나프탈렌의 알킬화로 얻어지며 상당히 긴 측쇄(side-chain)를 가지고 있다(**제3817호**).

27.08 -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 피치(pitch)

2708.20 - 피치코크스

이 호에 분류하는 **피치(pitch)**는 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를 고온으로 증류한 잔유물이며 중질(中質) 타르유 성분을 소량 함유한다. 이는 흑색이나 갈색으로 연하거나 깨지기 쉬운 것도 있다. 이것은 전극제조·도로포장용 타르·방수용 혼합물·응결 콜더스트(coal-dust) 등에 사용한다.

공기를 흡입하여 약간 변성화시킨 피치(pitch)는 비흡입 피치(unblown pitch)와 유사하며 이 호에 분류한다.

피치코크스(pitch coke)는 콜타르(coal tar), 그 밖의 광물성 타르, 이들 피치(pitch)를 고온이나 저온으로 증류하여 생긴 최종 잔재물 생산품이며 이는 전극의 제조나 연료로 사용한다.

27.09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석유와 역청질(瀝靑質) 광물(예: 혈암·석회질암·모래)에서 얻은 기름으로서 원유인 것을 분류한다. 즉, 천연생산품이거나 어떠한 성분이거나, 정상 방법이나 기름침전물(oil-deposit)을 농축하거나 역청유(瀝靑油)을 분해 증류하여 얻거나에 상관없다. 이와 같이 얻은 원유는 다음의 처리공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 (1) 경사(傾瀉 : decantation)
- (2) 탈염(脫鹽 : de-salting)
- (3) 탈수(脫水 : dehydration)
- (4) 증기압을 정상화하기 위한 안정화(stabilisation)
- (5) 압력의 유지와 배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름침전물(oil-deposit)을 환원할 목적으로 경질류분(very light fraction)을 제거
- (6) 위에서 설명한 처리 과정 중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먼저 채취한 탄화수소**만의** 첨가
- (7) 물품의 기본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 밖의 간단한 처리

이 호에는 또한 가스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 즉 천연가스를 채취한 즉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원유(crude oil)를 분류한다. 습성(wet) 천연가스에 함유된 탄화수소(C4에서 대략 C20까지)를 주로 냉각(cooling)과 감압(減壓 : depressurisation)하는 방법으로 얻는다.

27.1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710.19 -- 기타

2710.2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2710.99 -- 기타

(I) 일차 제품

이 호의 전반부에 분류한 물품은 제2709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을 거친 물품이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A) “톱트 크루드(topped crude)”(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다소 넓은 범위에서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얻어진 경유·중간유·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 [예: 파라피닉(paraffinic)·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이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휘발유(petroleum spirit)
- (2) 백정(白精 : white spirit)
- (3) 등유(kerosene)
- (4) 경유(gas-oil)
- (5) 중유(fuel oil)
- (6) 스핀들유(spindle-oil)와 윤활유(lubricating oil)
- (7) 백유(white oil)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분류물로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층 더 처리된 것[예: 산(酸)이나 알칼리(alkali)·선택 용제(selective solvent)·염화아연·흡수성 토류(earths) 등으로 처리하거나 재증류한 것]이라도, 이 같은 처리가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인 화합물이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상태의 화합물(제29류)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한 오일.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나 그 밖의 방법[예: 크래킹(cracking)·리포밍(reforming)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이 호는 **트리프로필렌(tripropylene)·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디이소부틸렌(di-isobutylene)·트라이소부틸렌(tri-isobutylene)** 등으로 불리는 **혼합 알킬렌(mixed alkylene)**을 포함한다. 이들은 불포화 비환식탄화수소류[옥틸렌(octylene)·노닐렌(nonylene)·이들의 동족체와 이성체 등]와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이다.

이들은 프로필렌·이소부틸렌이나 그 밖의 에틸렌계 탄화수소를 저중합하거나 광물유(鑛物油)를 크래킹(cracking)하여 얻는 특정 물품을 분리[예: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하여 얻는다.

혼합 알킬렌(mixed alkylene)은 주로 화학합성·용제(solvent)나 희석제로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옥탄가(octane rating)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첨가제를 사용하면 휘발유에 혼합될 수 있다.

다만, 액체 상태의 폴리올레핀(polyolefin)에 있어서는 섭씨 300°C에서 감압(減壓) 증류법(reduced-pressure distillation method)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101.3kPa)로 환산한 후, 용량이 전 용량의 60% 미만의 것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제39류)**.

더욱이 이 호에는 석유정제나 그 밖의 공정으로 얻는 방향(芳香)족 성분의 중량이 많은 오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707호)**.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유(petroleum spirit)** : 소량의 안티노크제(anti-knock product)[예: 테트라에틸납(tetraethyllead)과 디브로모에탄(dibromoethane)]와 항산화제(anti-oxidant)[예: 파라부틸아미노페놀(para-butylaminophenol)]를 가한 것

(2) **윤활제(lubricant)**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그 밖의 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지방과 기름)·산화방지제·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중기용 유류·흑연을 혼합한 기름[석유이나 역청유(瀝靑油)에 흑연을 분산시킨 것]·상부(上部)실린더용 윤활제·방직용유·고체 윤활제(그리스)(약 10% ~ 15%의 알루미늄·칼슘·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

(3) **번압기와 희로 차단용 기름**(윤활용으로 하지 않은 것) : 디터셔리부틸파라크레졸(ditertiarybutylparacresol)과 같은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여 특별히 정제하여 안정화한 것이다.

(4) **절삭유(切削油 : cutting oil)** : 절단용 공구 등과 가공되는 재료를 냉각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는 약 10% ~ 15%의 유화제(emulsifying agent)[예: 알칼리 술폰리시놀리에이트(alkali sulphoricinoleate)]를 첨가한 증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에 유화(乳化 : emulsion)시켜 사용한다.

- (5) **세척유(cleansing oil)** : 모터·엔진과 그 밖의 기기를 세척하는데 사용하며 이는 보통 기계를 조작하는 동안 형성된 검·탄소 침전물 등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유에 소량의 교질화제(peptising agent)를 첨가한 것이다.
- (6) **주형이형유(mould release oil)** : 주형에서 도자기·콘크리트봉 등의 제거를 촉진시키는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는 중유(heavy oil)에 약 10%의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 (7) **유압브레이크액(liquids for hydraulic brake)** 등 : 윤활성을 증진시키는 물질·산화방지제·방청제·소포제 등을 첨가한 중유로 구성되어 있다.
- (8) **바이오디젤(biodiesel)의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인 것). 그러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미만인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은 **제3826호**에 분류한다.

(II)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이 류의 주 제2호)를 주성분으로 하는 폐유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사용한 유압유(油壓油 : hydraulic oil)와 사용한 절연유(絶緣油 : transformer oil)] : 주로 열교환기·변압기나 스위치 기어와 같은 전기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폴리염소화 비페닐(PCB)·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와 폴리브롬화 비페닐(PBB)을 함유하고 있다.
- (2) 석유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s)로서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한 오일과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 (3) 유출된 오일·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切削油 : cutting oils)와 같이 물에 유화(乳化 : emulsion)되거나 물과 혼합된 웨이스트 오일
- (4)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잉크·염료·안료(顔料 : pigment)·페인트·래커(lacquer)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슬러지(sludge) : 유연(有鉛) 가솔린과 안티녹(anti-knock)의 저장탱크로부터 얻어진 이들은 주로 납·납화합물과 산화철(저장탱크의 녹에서 나온 것)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석유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런 슬러지(sludge)는 납이나 납화합물의 회수에 사용한다(**제2620호**).
- (b) 석유나 역청유(瀝靑油)가 전 중량의 70% 미만인 조제품(**제3403호**의 섬유용 조제급유제와 그 밖의 조제 윤활제와 **제3819호**의 유압브레이크액)
- (c)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에 관계없이(전 중량의 70%를 초과하더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이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이외의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이러한 경우로는 **제3403호**의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가 있는데, 이것은 백정(白精 : white spirit)안에 용해된 라놀린(lanol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놀린이 기본 물질이고 백정(白精)은 단순히 용제로만 작용하므로 사용 후에는 증발한다. 또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3808호**), 광유용 조제 첨가제(**제3811호**)와 바니시용의 혼합용제와 희석제(**제3814호**)와 휘발유(가솔린)엔진용의 시동액과 같은 **제3824호**의 특정조제품[이 시동액은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가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디에틸에테르 액이며 석유와 그 밖의 성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이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27.11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액화한 것

2711.11 -- 천연가스

2711.12 -- 프로판

2711.13 -- 부탄

2711.14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 부타디엔

2711.19 -- 기타

- 가스상태인 것

2711.21 -- 천연가스

2711.29 -- 기타

이 호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가공하지 않은**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그러나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은 순수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 탄화수소는 섭씨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 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 상태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가압하여 액체 상태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 I.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II. 에탄(ethane)과 에틸렌(ethylene)(순도가 95%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 III. 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lene))(순도 9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 IV. 부탄(butane)(노르말 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 각 95%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 노르말 부탄이나 이소부탄의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 V. 부텐(butene)(부틸렌(butylene))과 부타디엔(butadiene)(순도 9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 부텐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 VI.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상호혼합물

이 호에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그 밖의 다른 가스도 포함한다.

위의 순도백분율은 가스에 대해서는 용량백분율, 액체에 대해서는 무게백분율로 계산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화학적으로 단일인 탄화수소[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은 **제외한다**]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탄화수소(**제2901호**)[이러한 탄화수소에 방향족(芳香族)물질이 첨가된 것은 제29류 총설(A)의 다섯 번째 단락 참고. 에탄(ethane) · 에틸렌(ethylene) · 프로펜(propene) · 부탄(butane) · 부텐(butene)과 부타디엔(butadiene)에 대하여는 위의 II · III · IV와 V에 순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제5부
27.11

- (b)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cm³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화 부탄(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606호)
- (c) 액화 부탄을 함유하고 있는 흡연용 라이터나 그 밖의 라이터 부분품(제9613호)

27.12 - 석유젤리 ·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 슬랙 왁스(slack wax) · 오조케라이트(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 석유젤리

2712.2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712.90 - 기타

(A) 석유젤리(petroleum jelly)

석유젤리(petroleum jelly) : 감촉이 부드러우며 백색 · 황색이나 암갈색이다. 이는 특정의 석유(원유)를 증류하여 남은 잔유물이나 이 같은 잔유물에 고점도인 석유를 상당량 혼합하거나 파라핀 왁스(paraffin wax)나 세레신(ceresine)에 충분히 정제한 광유(refined mineral oil)를 혼합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않은 것[때로는 **페트로라탐(petrolatum)**이라고 한다] · 탈색한 것 · 정제의 젤리가 포함되며 또한 합성방법으로 얻은 석유젤리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석유젤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전온도계 측정방법[ISO 2207 방법(ASTM D 938 방법과 동등)]으로 섭씨 30℃ 이상에서 응고점을 가져야 하며, 섭씨 70℃에서 밀도가 0.942g/cm³ 미만이고, 섭씨 25℃에서 ISO 2137 방법(ASTM D 217 방법과 동등)으로 측정된 워크드 콘 페니트레이션(Worked Cone Penetration)이 350 미만이고 섭씨 25℃에서 ISO 2137 방법(ASTM D 937 방법과 동등)으로 측정된 콘 페니트레이션(Cone Penetration)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호에는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포장에 되어 있는 피부보호에 적합한 석유젤리는 **포함하지 않는다(제3304호)**.

(B)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 슬랙왁스(slack wax) · 오조케라이트(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 ·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파라핀왁스 : 석유의 증류물, 혈암(shale)이나 역청질(瀝青質) 광물에서 얻은 기름의 증류물로부터 추출한 탄화수소 왁스이다. 이 왁스는 반투명하며 백색이나 황색이며 비교적 결정 구조가 뚜렷하다.

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crystalline)석유왁스 : 일종의 탄화수소왁스이다. 이는 석유 잔류분이나 진공증류(vacuum-distilled)하여 얻은 윤활유 유분으로부터 추출하여 얻은 것으로 파라핀왁스보다 불투명하며 정제되고 불명확한 미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보통 이는 파라핀왁스보다 녹는점이 높으며 이는 유연한 플라스틱성의 것 ·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것 · 암갈색부터 백색까지 여러 가지 것이 있다.

오조케라이트(ozokerite) : 천연 광물성 왁스이며 정제한 경우는 세레신(ceresine)으로 알려져 있다.

갈탄[또는 몬탄(montan)]왁스와 “몬탄피치(Montan pitch)”로 알려진 물품은 갈탄에서 추출한 에스테르왁스(ester wax)이다. 이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단하고 갈색이며 정제할 때는 백색인 경우도 있다.

토탄왁스(peat wax) : 물리·화학적으로 갈색왁스와 유사하나 약간 유연하다.

이 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광물성 왁스[슬랙왁스(slack wax)와 스케일왁스(scale wax)]**는 윤활유를 탈왁스(de-waxing)하여 얻는다. 이는 파라핀왁스보다 오일(油)의 함유량이 많고 덜 정제되어 있다. 이들 색조는 백색에서 연한 갈색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이 호에서 언급한 물품과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예: 합성파라핀 왁스와 합성 마이크로 크리스털린(microcrystalline) 왁스]으로 얻은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왁스와 같은 고중합왁스는 **제외한다**. 이것은 **제3404호**에 해당한다.

이 모든 왁스는 가공하지 않거나 정제한 것·혼합하거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는 양초(특히 파라핀 왁스)·광택제 등의 제조용·절연용·직물 완성 가공용·성냥 함침용·방청제 등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다음 물품은 **제3404호**에 분류한다.

- (a) 인조왁스 : 갈탄왁스나 그 밖의 광물성 왁스를 화학적 변성하여 얻은 것
- (b) 혼합왁스 : 유화(乳化 : emulsified)하지 않은 것이나 용제(solvent)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 (i) 이 호의 왁스에 동물성 왁스(고래 왁스를 포함한다)·식물성 왁스나 인조 왁스를 혼합한 것
 - (ii) 이 호의 왁스에 지방·수지·광물성 물질이나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왁스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27.13 -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 석유코크스

2713.11 --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2713.12 -- 하소(煨燒)한 것

2713.20 - 석유역청(瀝靑)

2713.9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A) 석유코크스[녹색코크스나 하소(煨燒 : calcined)한 코크스]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크래킹(cracking)하거나 분해 증류하여 얻는 고체 잔재물로 흑색이며 다공성(多孔性)이다. 이는 주로 전극 제조용[하소(煨燒)한 코크스]이나 연료용(녹색코크스)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B) 석유역청(瀝靑 : petroleum bitumen)[또한 석유피치·정제피치·석유역청(瀝靑 : petroleum asphalt)으로 알려진 것] : 보통 원유를 증류하여 남은 잔재물이며 갈색이나 흑색으로 유연하거나 잘 부서지기 쉽다. 이는 도로 포장용·방수용 등으로 사용한다. 석유역청(瀝靑)에 공기를 흡입하여 약간 변성시킨 것은 공기를 흡입하지 않은 아스팔트와 유사하며 이 호에 분류한다.

(C) 다음의 석유의 그 밖의 잔재물을 포함한다.

- (1) 특정의 선택 용제(selective solvent)로 운활유를 처리하여 추출되는 것
- (2) 석유에서 얻은 석유 검(petroleum gum)과 그 밖의 수지성 물품
- (3) 산(酸) 잔재물과 이미 사용한 표백토류로서 소량의 유분을 함유한 것

아스팔트·코크스와 그 밖의 잔재물은 혈암유(shale oil)나 그 밖의 역청유(瀝靑油)류를 처리하여 얻은 것이라면 이 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수용성의 나프텐산염이나 석유술폰산염[특정비율의 광유(鑛油)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알칼리금속·암모니아·에탄올아민의 염)(**제3402호**)
- (b)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이나 석유술폰산염(더 구체적인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
- (c) 정제하지 않았거나 정제한 나프텐산(**제3824호**)

27.14 - 천연의 역청(瀝靑)·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2714.90 - 기타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트리니다드 레이크(Trinidad Lake) 아스팔트”)와 일부 국가에서 “아스팔트모래(asphaltic sand)”로 알려진 것)를 분류한다. 이는 갈색이나 흑색이며, 고체이거나 불활성 광물질에 천연적으로 탄화수소가 생긴 고점도의 혼합물이며, 이것은 아스팔트의 경우에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 bituminous shale)·유모 혈암(油母 頁巖 : oil shale)·타르샌드(tar sand)
- (2) 아스팔타이트(asphaltite)
- (3) 아스팔트질의 석회석(asphaltic limestone)과 그 밖의 아스팔트질의 암석

이들 물품은 수분이나 맥석(gangue)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과 가루화하거나 상호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천연 역청질(瀝靑質)에 단순히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714호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이 호에는 탈수시킨 뒤 가루로 만든 천연 역청질(瀝靑質)을 물에 분산한 것으로서 단지 안전성을 높이고 취급이나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유화제(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은 도로 포장용·방수용·바니시와 에나멜 제조 등에 사용하며 역청질 혈암(bituminous shale)과 타르샌드(tar sand)는 광유(鑛油)채취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제2517호)
- (b) 유연탄(bituminous coal)(제2701호)
- (c) 역청질(瀝靑質)의 갈탄(제2702호)
- (d) 석유에서 얻은 아스팔트(제2713호)
- (e) 천연 역청질(瀝靑質)을 기본 재료로 한 역청질(瀝靑質) 혼합물로서 단지 안전성을 높이고 취급이나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물이나 유화제(계면활성제)이외의 물질을 첨가한 것(제2715호)
- (f) 제6807호에 해당하는 아스팔트의 제품

○
○ ○

[소호해설]

소호 제2714.10호

이 소호에는 탄화수소를 함유하는 수성암(sedimentary rock)이나 모래(sand)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2709호의 물품[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의 모양으로 분리되거나 이들 물품이 추출될 수 있는 모양으로 분리될 수 있다. 가스와 그 밖의 물품도 얻어질 수 있고 열처리나 그 밖의 추출법으로 분리해 낸다[예: 증류법·레토르트법(retorting)이나 기계적 공정]. 혈암(頁岩 : shale)에 포함된 탄화수소는 유모(油母 : kerogen)로 불리어지는 유기 물질의 모양으로 된다.

27.15 -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青), 석유역청(瀝青),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이 호에 분류하는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은 다음과 같다.

- (1) **컷백(cut-back)**은 일반적으로 60% 이상의 아스팔트에 용제가 함유된 것이며 도로 포장용에 사용한다.
- (2) 아스팔트·피치(pitch)나 타르를 **유화(乳化 : emulsion)**하거나 물에서 안정분산시킨 것이며 특히 도로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
- (3) 아스팔트 **매스틱(mastic)**과 그 밖의 역청질(瀝青質)의 매스틱·모래나 석면과 같은 광물성 물질과 혼합한 역청질(瀝青質)의 혼합물. 이들 물품은 충전 재료나 성형 재료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사용 전에 재용융(再溶融 : re-melted)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블록 등으로 응결된 물품까지 포함되며 규칙적인 형태의 최종 제품[도로포장용 판석(paving flagstone)·판(板)과 타일과 같은 것]은 **제외한다(제6807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타르와 혼합하여 부순 돌)(**제2517호**)
- (b) 타르와 응집한 백운석(白雲石)(**제2518호**)
- (c) 피치(pitch)에 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 그 밖의 콜타르(coal tar) 증류물을 첨가한 혼합물(**제2706호**)
- (d) 탈수시킨 뒤 가루로 만든 천연 역청질(瀝青質)을 물에 분산시킨 것으로서 단지 안전성을 높이고 취급이나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유화제(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것(**제2714호**)
- (e) 역청질(瀝青質)의 페인트와 바니시(**제3210호**), 이것은 이 호의 특정 혼합물과는 서로 다른데, 예를 들면, 충전제의 미세함의 정도(사용할 경우)·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피막형성제의 존재[아스팔트·타르나 피치(pitch)는 제외한다]·페인트 또는 바니시와 같이 공기 중에 노출하여 건조되는 능력과 형성된 피막의 두께와 경도 등에 따라 구분된다.
- (f) **제3403호**의 조제유탄유

27.16 - 전기에너지(임의의 호)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1. 가. 제2844호나 제2845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질(방사성 광물은 제외한다)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나. 가목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3호, 제2846호, 제2852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에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4.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총설

주1

이 주의 제1호가목 규정에 따라 모든 방사성 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와 이 같은 원소와 동위원소의 화합물(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인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2844호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방사성 염화나트륨과 방사성 글리세롤은 제2844호에 분류하며 제2501호나 제2905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방사성 에틸알코올·방사성 금과 방사성 코발트는 어떤 상태로 되어있던 제2844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방사성 광물은 이 표의 **제5부**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한다.

비방사성 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이들 물질(무기 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인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2845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탄소의 동위원소는 제2845호에 분류하며 제2803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 부의 주 제1호나목에 따라 제2843호, 제2846호나 제2852호에 열거한 물품은 방사성 원소나 동위원소의 형태가 아닌 것(제2844호나 제2845호에 분류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해당 각 호에 분류하며, 제6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예로 카세인은(silver caseinate)은 제2843호로 분류하며 제3501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사진용으로 소매포장한 질산은(silver nitrate)은 제3707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2843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2843호, 제2846호나 제2852호는 **제6부의 다른 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유의하여 한다. 제2843호, 제2846호나 제2852호에 설명된 물품이 이 표의 다른 부의 호에 동시에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있는 부나 류의 주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규정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희토류(稀土類: rare-earth) 금속의 화합물로서 제2846호에도 해당될 수 있는 가도리나이트(gadolinite)는 제28류의 주 제3호가목에서 제28류는 **제5부**에 분류하는 광물성 생산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530호에 분류한다.

주2

이 류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나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나 제2852호에 열거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해당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있더라도 분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치료를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된 황은 제2503호나 제2802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3004호**에 분류하며 글루(glue)로서 소매 포장한 덱스트린(dextrin)은 제3505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3506호**에 분류한다.

주3

이 주는 두 종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구성요소의 전부나 일부가 제6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는 제6부나 제7부에 해당하는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되는 구성요소가 세트로 된 물품에 한정한다. 이러한 세트로 된 물품은 주 제3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세트로 된 물품의 예로서는 제3006호의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의 특정 바니시와 페인트, 제3214호의 매스틱(mastic) 등이 있다. 경화제(hardener)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경화제가 없이 포장된 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특히, 제32류 총설과 제3214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한편,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구성요소의 전부나 일부가 제6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사용 전에 혼합됨이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 부의 주 제3호에 의해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한 물품은 통칙(일반적으로 통칙제3호나목)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물품이 소매용으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요소별로 구분해서 분류해야 한다.

주4

이 부의 주 제4호는 제3827호가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규정한 **제6부의 다른 호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유기혼합용제(organic composite solvent)"로서 제3814호의 첫 번째 범주에 분류할 수 있는 동시에 제3827호에도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비록 제3814호의 첫 번째 범주의 용어와 제3827호의 용어가 모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문구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더라도, 제381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827호는 제3824호에는 우선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제3824호는 그러한 물품을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 28 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
 - 다. 가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는 아이티온산염과 슐폭실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제2831호),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제2836호),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제2837호),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티오시안산염(제2842호),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탄화물(제2849호)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분류한다.
 - 가. 탄소의 산화물·시안화수소·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과 그 밖의 단일의 시아노겐산이나 시아노겐착산(제2811호)
 - 나.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제2812호)
 - 다. 이황화탄소(제2813호)
 - 라.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과 그 밖의 시안산착염(제2842호)
 - 마.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제2847호), 산화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시안아미드와 그 금속유도체(제2853호)(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칼슘시안아미드는 제외한다)(제31류)
3. 제6부의 주 제1호의 것은 해당 호에 따르고,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염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제5부의 기타 생산품
 - 나. 유기-무기화합물(주 제2호의 것은 제외한다)
 - 다. 제31류의 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 라. 제3206호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제3207호의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알갱이,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6부
제28류

- 마. 인조흑연(제3801호), 제3813호의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4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젠화물로서 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제3824호의 배양한 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바.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의 더스트(dust)와 가루(제7102호부터 제7105호까지)와 제71류의 귀금속이나 귀금속의 합금
- 사. 제15부의 금속(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금속합금이나 금속 서멧(cermet)[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을 포함하되, 금속을 혼합하여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로 한정한다]
- 아. 광학소자(제9001호, 예: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젠화물)
4. 제2절의 비(非)금속산과 제4절의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한 착산은 제2811호로 분류한다.
5. 제2826호부터 제2842호까지는 금속의 염, 암모늄염, 페록시염에만 적용한다. 겹염이나 착염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2842호로 분류한다.
6. 제2844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 가. 테크네튬(원자번호43)·프로메튬(원자번호61)·폴로늄(원자번호84)과 원자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 나. 천연이나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제14부와 제15부의 귀금속이나 비금속(卑金屬)인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다. 가목과 나목의 원소,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 합금·분산물[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위의 가목과 나목의 원소·동위원소나 이들의 무기-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74벵크렐(0.002마이크로퀴리)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마. 원자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 바. 방사성 잔재물(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 주 제6호와 제2844호, 제2845호에서 “동위원소”란 다음을 말한다.
- 단일의 핵종(核種)(천연에서 단일 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 어느 한 원소의 동위원소들과 해당 원소의 혼합물로서 해당 동위원소의 하나나 몇 개를 농축한 것(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한 것을 말한다)
7. 제 2853 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인화동[인동(燐銅)]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웨이퍼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852.10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란 제28류 주 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나 제29류 주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기나 무기의 수산화합물을 말한다.

총설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 한정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 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원소 각각의 비율은 화합물마다 일정하고 고유하므로 이를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이라고 한다.

결정격자 속의 격차나 삽입물(insertion)로 인하여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비율에 사소한 편차(small deviation)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화합물은 준-스토이치오메트릭(quasi-stoichiometric) 불리며 편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 볼 수 있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

(류의 주 제1호)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서 **불순물(impurity)**을 함유하거나 **물에 녹아있는** 것은 제28류에 분류한다.

“불순물(impurity)”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 (b)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 (c)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reagent)
- (d) 부산물(by-product)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소와 화합물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경우에는 물품의 안전이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렇게 한 경우가 아니면 제28류에서 **제외한다**(이때,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않아야만 한다).

따라서 벤젠(benzene)에 용해된 산화염화탄소, 암모니아 알코올용액과 수산화알루미늄 콜로이드(colloid) 용액은 제28류로 **분류하지 않고 제3824호**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콜로이드 분산물(分散物: dispersion)은 보다 구체적인(specific) 호에 분류하지 **않는 한 제3824호**로 분류한다.

위에서 규정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에 보존이나 수송의 필요상 **안정제(stabilizer)**를 첨가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예: 붕산을 안정제로서 과산화수소에 첨가한 것은 제2847호에 분류하나; 과산화나트륨에 촉매(catalyst)를 혼합한 것(과산화수소의 생산을 위해)은 제28류에서 **제외하여 제3824호**에 분류한다.

또한 본래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화학약품을 첨가한 물품은 안정제로 간주하지만, 첨가한 양이 목적을 초과치 않고 첨가한 것이 성질을 변화치 않으며 특정 용도에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로 **한정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도 이 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도 있다. 반면 **방수제(water-repellent)**를 첨가한 물품은 방수제가 그 물품의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

첨가물이 이들 물품을 일반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않는 다른 **동일조건에서**, 이 류의 물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a) 항분제(anti-dusting agent)를 첨가한 물품[예: 취급 중 항분을 위하여 특정 유독성 화학품에 광유(鑛油)를 첨가한 것]
- (b) 위험한 화학품이나 유독성 화학품(예: 제2842호의 비산납)에 식별을 용이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하여 물품 취급 상의 표시나 경고로서 착색제를 첨가한 것. 그러나 다른 이유로 착색제를 첨가한 것[예: 습도지시약(humidity indicator)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리카겔(silica gel)에 코발트 염(cobalt salt)을 첨가한 것(제3824호)]은 **제외한다**.

(B) 제28류와 제29류의 화합물의 구별
(류의 주 제2호)

제28류에 해당하는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과 그들이 해당하는 호는 다음과 같다.

- 제2811호 - 탄소의 산화물, 시안화수소·육시아노철(II)산과 육시아노철(III)산, 이소시아나산·뇌산·티오시아나산·시아노 몰리브덴산과 그 밖의 단일이나 착시아노겐산
- 제2812호 -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
- 제2813호 - 이황화탄소
- 제2831호 - 유기안정제를 첨가한 아디티온산염과 숄폭실산염
- 제2836호 -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
- 제2837호 -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아나화물과 시안착염[육시아노철(II)산염·육시아노철(III)산염·니트로실펜타시아노철(II)산염·니트로실펜타시아노철(III)산염·시아노망간산염·시아노카드뮴산염·시아노크로뮴산염·시아노코발트산염·시아노니콜산염·시아노동(II)산염 등]
- 제2842호 -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아나산염·텔루로시아나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 디아미노 크로뮴산염(라이네크산염)과 그 밖의 시안산 착염과 시안산복염
- 제2843호 - 무기와 유기화합물
 - 부터 (i) 귀금속
- 제2846호 (ii) 방사성 원소
- 까지 (iii) 동위원소
- (iv) 희토류(稀土類: rare-earth metal) 금속·이트륨이나 스칸듐

- 제2847호 - 고체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안정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2849호 - 탄화물[이성분탄화물(붕화탄화물·탄화질화물 등)](탄화수소 제외한다)
- 제2852호 - 무기나 유기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 제2853호 - 산화황화탄소
티오키아르보닐(thiocarbonyl) 할로젠화물·시아노젠과 시아노젠의 할로젠화물·시아나미드와 시안아미드의 금속유도체(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칼슘 시안아미드는 제외한다-제31류 참조)

모든 그 밖의 탄소화합물은 제28류에서 제외한다.

(C)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제28류에 분류하는 물품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에 한정한다는 규정에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다음 물품들은 예외사항에 속한다.

- 제2802호 - 콜로이드(colloid)황
- 제2803호 - 카본 블랙(carbon black)
- 제2807호 - 발연황산
- 제2808호 - 황질산
- 제2809호 - 폴리인산
- 제2813호 - 삼황화인
- 제2818호 - 인조 커런덤(corundum)
- 제2821호 -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하여 화합철분이 전 중량의 70%이상의 어스컬러(earth colour)
- 제2822호 - 상거래 관습상 산화코발트
- 제2824호 -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 제2828호 - 상거래 관습상 하이포아염소산 칼슘
- 제2830호 - 폴리황화물
- 제2831호 - 유기 물질로서 안정화한 아이티온산염과 슐폭실산염
- 제2835호 - 폴리인산염
- 제2836호 - 상거래 관습상의 탄산 암모늄(카르바산 암모늄을 함유한 것)
- 제2839호 - 상거래 관습상의 알칼리 금속의 규산염
- 제2842호 - 알루미늄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
- 제2843호 - 귀금속의 콜로이드(colloid)·귀금속의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무기나 유기화합물
- 제2844호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을 함유하는 화합물(유기나 무기)과 혼합물
- 제2845호 - 그 밖의 동위원소와 그들의 화합물(무기나 유기)
- 제2846호 -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 metal) 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화합물
- 제2849호 - 탄화물
- 제2850호 -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과 붕화물
- 제2852호 - 무기나 유기 수은화합물[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 제2853호 - 인화물(磷化物 : phosphide), 액체공기와 압축공기·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 앞에서 설명한 제2843호 이하 참조)

(D)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무기화합물로서 제28류에서 제외하는 것
(류의 주 제3호와 제8호)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무기화합물로서 화학적으로 순수하더라도 어떤 것은 제28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있다.

예:

- (1) 제25류의 특정 물품(즉,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
- (2) 제31류의 특정 무기염[즉, 질산나트륨·질산암모늄·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황산암모늄·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오르토인산 이수소암모늄과 오르토수소이암모늄(인산-암모늄이나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이것은 특정 경우에는 제3824호나 제9001호에 분류될 수 있다)]
- (3) 제3801호의 인조 흑연(artificial graphite)
- (4) 제71류에 해당하는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과 이들의 더스트(dust)와 가루
- (5) 제14부나 제15부에 해당되는 귀금속과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이들 금속들의 합금을 포함한다)

특정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그 밖의 원소나 화합물로서 제28류에 분류하는 것으로 특정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화학조성이 변화되지 않고 특정 처리를 한 것도 이 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예:

- (a)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이거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된 것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에 적합한 물품(제3004호)
- (b) 발광성(luminescent) 물질로 처리하여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텅스텐산칼슘)(제3206호)
- (c) 조제 향료나 화장품이나 화장실용품류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포장된 물품(예: 명반)(제3303호부터 제3307호)
- (d) 접착제로 사용하는 물품(예: 물에 녹인 규산나트륨)으로서 순중량 1kg 이하로 소매용 포장한 것(제3506호)
- (e) 사진용의 물품(예: 티오황산나트륨)으로서 일정량으로 한 것이거나 사진용에 사용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한 물품(제3707호)
- (f) 제3808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포장된 살충제 등(예: 사붕산나트륨)
- (g) 소화기용의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예: 황산)(제3813호)
- (h) 원소[예: 실리콘·셀렌(selenium)]를 전자공업용으로 도핑(doped) 처리하여 디스크 모양·웨이퍼(wafer) 모양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제3818호)
- (ij)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제3824호)
- (k) 광학용으로 사용하는 알칼리(alkali)나 알칼리토류(alkaline-earth)금속의 할로겐화물(예: 플루오르화리튬·플루오르화칼슘·브롬화칼륨·브롬요드화칼륨(제9001호)이나 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배양한 결정의 할로겐화물(제3824호)

(*) 제2843호부터 제2846호와 제2852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이 제외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호를 참조)

(E) 제28류의 2 이상의 호에 동시에 분류하는 물품의 분류

제6부의 주 제1호는 동시에 분류 가능한 물품의 문제점을 취급한다.

- (a) 제2844호나 제2845호와 제28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
- (b) 제2843호, 제2846호나 제2852호와 제28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제2844호나 제2845호는 제외한다)

비금속산(non-metal acid)(제2절에 해당)과 금속산(metal acid)(제4절에 해당)으로 구성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착산(complex acid)은 제2811호에 분류한다(제28류의 주 제4호와 제2811호 해설 참조).

겹염(double inorganic salt)과 착염(complex inorganic salt)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2호에 분류한다(제28류의 주 제5호와 제2842호 해설 참조).

제 1 절

원 소

(제2801호 - 제2805호)

총설

원소는 비(非)금속과 금속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절에는 적어도 어떤 형태이든 간에 모든 비(非)금속이 포함되지만 반면에 다수의 금속은 다른 호에 분류한다[예: 귀금속(제71류와 제2843호)·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제72류에서 제76류까지와 제78류에서 제81류까지)과 방사성 원소와 동위원소(제2844호)와 안정동위원소(제2845호)].

적당한 분류를 표시하기 위하여 알려진 여러 원소의 일람표를 별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안티모니(antimony)와 같이 특정 원소는 금속과 비(非)금속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점이 이 표해설서 상의 분류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다.

원소	기호	원자번호	품목분류
악티늄.....	Ac	89	방사성 원소(제2844호)
알루미늄.....	Al	13	비(卑)금속(제76류)
아메리슘.....	Am	95	방사성 원소(제2844호)
안티모니.....	Sb	51	비(卑)금속(제8110호)
아르곤.....	Ar	18	희(稀)가스(제2804호)
비소.....	As	33	비(非)금속(제2804호)
아스탄틴.....	At	85	방사성 원소(제2844호)
바륨.....	Ba	56	알칼리토류금속(제2805호)
버클륨.....	Bk	97	방사성 원소(제2844호)
베릴륨.....	Be	4	비(卑)금속(제8112호)
비스무트.....	Bi	83	비(卑)금속(제8106호)
붕소.....	B	5	비(非)금속(제2804호)
브롬.....	Br	35	비(非)금속(제2801호)
카드뮴.....	Cd	48	비(卑)금속(제8107호)
세슘.....	Cs	55	알칼리금속(제2805호)
칼슘.....	Ca	20	알칼리토류금속(제2805호)
캘리포늄.....	Cf	98	방사성 원소(제2844호)
탄소.....	C	6	비(非)금속(제2803호) (다만, 인조핵연에 대해서는 제3801호 참조)
세륨.....	Ce	58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염소.....	Cl	17	비(非)금속(제2801호)
크로뮴.....	Cr	24	비(卑)금속(제8112호)
코발트.....	Co	27	비(卑)금속(제8105호)
구리.....	Cu	29	비(卑)금속(제74류)
퀴륨.....	Cm	96	방사성 원소(제2844호)
디스프로슘.....	Dy	66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아인슈타이늄.....	Es	99	방사성 원소(제2844호)
에르븀.....	Er	68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유로퓸.....	Eu	63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페르뮴.....	Fm	100	방사성 원소(제2844호)
불소(플루오르).....	F	9	비(非)금속(제2801호)
프랑슘.....	Fr	87	방사성 원소(제2844호)
가돌리늄.....	Gd	64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갈륨.....	Ga	31	비(卑)금속(제8112호)
게르마늄.....	Ge	32	비(卑)금속(제8112호)
금.....	Au	79	귀(貴)금속(제7108호)
하프늄.....	Hf	72	비(卑)금속(제8112호)
헬륨.....	He	2	희(稀)가스(제2804호)

제6부
제28류/제1절

원소	기호	원자번호	품목분류
홀뮴.....	Ho	67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수소.....	H	1	비(非)금속(제2804호)
인듐.....	In	49	비(卑)금속(제8112호)
요드.....	I	53	비(非)금속(제2801호)
이리듐.....	Ir	77	귀(貴)금속(제7110호)
철.....	Fe	26	비(卑)금속(제72류)
크립톤.....	Kr	36	희(稀)가스(제2804호)
란타넘.....	La	57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로렌슘.....	Lr	103	방사성 원소(제2844호)
납.....	Pb	82	비(卑)금속(제78류)
리튬.....	Li	3	알칼리금속(제2805호)
루테튬.....	Lu	71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마그네슘.....	Mg	12	비(卑)금속(제8104호)
망간.....	Mn	25	비(卑)금속(제8111호)
멘델레븀.....	Md	101	방사성 원소(제2844호)
수은.....	Hg	80	금속(제2805호)
몰리브덴(몰리브덴).....	Mo	42	비(卑)금속(제8102호)
네오디뮴.....	Nd	60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네온.....	Ne	10	희(稀)가스(제2804호)
넵투늄.....	Np	93	방사성 원소(제2844호)
니켈.....	Ni	28	비(卑)금속(제75호)
니오븀.....	Nb	41	비(卑)금속(제8112호)
질소.....	N	7	비(非)금속(제2804호)
노벨륨.....	No	102	방사성 원소(제2844호)
오스뮴.....	Os	76	귀(貴)금속(제7110호)
산소.....	O	8	비(非)금속(제2804호)
팔라듐.....	Pd	46	귀(貴)금속(제7110호)
인.....	P	15	비(非)금속(제2804호)
백금.....	Pt	78	귀(貴)금속(제7110호)
플루토늄.....	Pu	94	방사성 원소(제2844호)
폴로늄.....	Po	84	방사성 원소(제2844호)
칼륨.....	K	19	알칼리금속(제2805호)
프라세오디뮴.....	Pr	59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프로메튬.....	Pm	61	방사성 원소(제2844호)
프로트악티늄.....	Pa	91	방사성 원소(제2844호)
라듐.....	Ra	88	방사성 원소(제2844호)
라돈.....	Rn	86	방사성 원소(제2844호)
레늄.....	Re	75	비(卑)금속(제8112호)
로듐.....	Rh	45	귀(貴)금속(제7110호)
루비듐.....	Rb	37	알칼리금속(제2805호)
루테튬.....	Ru	44	귀(貴)금속(제7110호)
사마륨.....	Sm	62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스칸듐.....	Sc	21	희토류(稀土類)금속과 함께 분류(제2805호)
셀레늄(셀렌).....	Se	34	비(非)금속(제2804호)
규소.....	Si	14	비(非)금속(제2804호)
은.....	Ag	47	귀(貴)금속(제7106호)
나트륨.....	Na	11	알칼리금속(제2805호)
스트론튬.....	Sr	38	알칼리토류금속(제2805호)
황.....	S	16	비(非)금속(제2802호) (다만, 가공하지 않은 황에 대해서는 제2503호 참조)
탄탈륨.....	Ta	73	비(卑)금속(제8103호)
테크네튬.....	Tc	43	방사성 원소(제2844호)
텔루르.....	Te	52	비(非)금속(제2804호)
테르븀.....	Tb	65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탈륨.....	Tl	81	비(卑)금속(제8112호)
토륨.....	Th	90	방사성 원소(제2844호)
툴륨.....	Tm	69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주석.....	Sn	50	비(卑)금속(제80류)
티타늄.....	Ti	22	비(卑)금속(제8108호)
텅스텐.....	W	74	비(卑)금속(제8101호)
우라늄.....	U	92	방사성 원소(제2844호)
바나듐.....	V	23	비(卑)금속(제8112호)
크세논.....	Xe	54	희(稀)가스(제2804호)
이더븀.....	Yb	70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이트륨.....	Y	39	희토류(稀土類)금속과 함께 분류(제2805호)
아연.....	Zn	30	비(卑)금속(제79류)
지르코늄.....	Zr	40	비(卑)금속(제8109호)

28.01 - 플루오르 · 염소 · 브롬 · 요드

2801.10 - 염소

2801.20 - 요드

2801.30 - 플루오르와 브롬

이 호에는 할로젠 원소로서 알려진 비(非)금속을 분류한다[아스타틴(At)은 **제외한다(제2844호)**].

(A) 플루오르(fluorine)

플루오르(fluorine)는 자극성 냄새를 가진 희미한 녹색 가스이며 ; 점막을 자극하므로 흡입하면 위험하며 부식성(腐蝕性)이 있다. 이는 철제 용기에 가압하여 제시하며 ; 특히 목재 · 지방(fat)과 직물(textile)과 같은 유기 물질을 발화시키는 매우 활성 있는 원소이다.

플루오르는 특정 플루오르화물과 유기플루오르 유도체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B) 염소(chlorine)

염소(chlorine)는 보통 염화알칼리 특히 염화나트륨을 전해하여 얻는다.

염소는 질식성이나 부식성이 있는 녹색의 가스로서 공기보다 2.5배 무거우며 물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액화한다. 일반적으로 철제 실린더 · 탱크 · 철도탱크 · 웨건(wagon)이나 바아지(barge)로 운반한다.

염소는 색소와 유기물을 파괴하므로 식물성 섬유(동물성 섬유는 부적당)의 표백제로서도 사용하고 목재 펄프를 조제하는데도 사용한다. 살균성(殺菌性)과 방부성(防腐性)으로 물을 소독하는데 사용한다. 금 · 은과 카드뮴의 야금(冶金)용 · 하이포아염소산염 · 금속염화물 · 염화카르보닐 · 유기 합성(예: 합성 염료 · 인조 왁스와 염화 고무)에 사용한다.

(C) 브롬(bromine)

브롬(bromine)은 염수모액(saline mother liquor)에 함유한 브롬화알칼리에 염소를 반응시키거나 브롬화물을 전해(electrolysing)하여 얻는다.

이는 비중이 매우 크며(섭시 0도에서 3.18) 부식성이 있는 적색이나 암갈색의 액체이며 저온일 때는 눈(眼)을 자극하는 질식성이 있는 증기가 발생한다. 이 증기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 황색으로 변하게 하고 톱밥과 같은 유기 물질을 발화시킨다. 유리 용기나 도자기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물에 약간 녹으며 이 호에는 아세트산(acetic acid)에 브롬(bromine)용액을 가한 것은 **제외한다(제3824호)**.

이는 의약품(예: 진정제) · 염료[예: 에오신(eosin) · 인디고(indigo)의 브롬화 유도체(brominated derivative)] · 사진용 화학품(브롬화은) · 야금(冶金) · 최루성 물질(브롬화-아세톤)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D) 요드(iodine)

요드(iodine)는 천연 질산나트륨의 모액을 이산화황이나 아황산수소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추출하거나 건조된 해초 · 태운 해초나 회(灰)를 화학 처리한 것으로부터 추출한다.

제6부
28.01

이는 비중(섭씨 0°C에서 4.95)이 매우 큰 고체로 염소와 브롬을 연상케 하는 냄새를 가졌으며 ; 흡입하면 위험하다. 실온(室溫)에서 승화하고 전분-페이스트(starch-paste) 블루(blue)로 변한다. 불순한 것은 작은 알갱이(speck)이나 거친 가루(coarse powder)로 얻어진다. 승화하여 순수한 것은 빛는 회색의 플레이크(flake)나 금속 광택이 나는 결정 모양으로서 보통 유리병에 넣어 제시한다.

이는 의약에 사용하며, 또한 사진용 약품(요드화나트륨)·염료[예: 에리스로신(erythrosine)]와 의약품의 제조와 유기 합성의 촉매·시약 등으로 사용한다.

28.02 - 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 콜로이드황

(A) 승화황(昇華黃 : sublimed sulphur) · 침강황(沈降黃 : precipitated sulphur)

이들 두 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황은 보통 순도가 약 99.5%이다.

승화황(昇華黃 : sublimed sulphur)이나 **황화가루(黃花 : flower of sulphur)**는 가공하지 않거나 불순한 황을 서서히 증류하여 얻으며 **고체로 농축**(또는 승화)되어 미세하고 매우 가벼운 입자로 된다. 주로 농약 · 화학공업 · 고무 가황용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이러한 이산화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암모니아용액으로 처리한 “세척 승화황(washed sublimed sulphur)”을 포함하며 ; 이는 의약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침강황(沈降黃 : precipitated sulphur)**은 보통 황화물의 용액이나 알칼리 · 알칼리토류금속의 폴리황화물의 용액에 염산을 가하여 침전시켜 얻는다. 이는 승화황(昇華黃)보다 미세하며 더 옅은 황색이며 ; 냄새는 황화수소와 유사하며 오래되면 변질된다. 이는 거의 의약품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의 침강황(沈降黃)은 때로는 “침강한 것(precipitated)”이라 불리는 “재생한 것(recovered)(잘게 부순 것이나 미세분말화한 것)”의 황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이 재생황은 **제2503호**에 분류한다.

(B) 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

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은 젤라틴(gelatin)을 함유한 이산화황의 용액에 황화수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또한 이는 티오황산나트륨에 광산(鑛酸)을 작용하거나 전기적 수단으로 분산하여 얻는 경우도 있다. 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은 백색 분말이며 물에 유화(乳化)되며 ; 그러나 이것은 보호 콜로이드제[알부민(albumin)이나 젤라틴]를 첨가해야만 콜로이드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보호 콜로이드제를 첨가하였다 해도 콜로이드 상태 유지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이 호에는 이러한 조제 콜로이드용액을 포함한다. 모든 콜로이드 분산물(分散物 : dispersion)과 같이 황분산물은 흡수면이 넓으며 착색 물질을 흡수할 수 있어 의약에서 대단히 활성있는(active) 방부제(antiseptic)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때로는 매우 순수하더라도 프라쉬 공정(Frasch process)으로 얻은 비정제황(unrefined sulphur)과 정제황(refined sulphur)은 **제외한다(제2503호)**.

28.03 -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탄소는 고체 상태의 비(非)금속 원소이다.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소를 포함한다.

카본 블랙(carbon black)은 카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유기물을 불완전연소하거나 크래킹(cracking)(열·전기 아크나 전기 스파크)하여 생긴다.

(1) 메탄(methane)·안트라센(anthracenic)가스[즉, 안트라센(anthracene)을 탄화시켜 생긴 가스]와 아세틸렌과 같은 천연 가스·아세틸렌 블랙은 극히 미세하고 순수한 물품으로 압축 아세틸렌을 전기 스파크로 급분해하여 얻어진다.

(2) 나프탈렌·수지·오일(oil)(램프 블랙)

카본 블랙은 제조방법에 따라 채널 블랙(channel black)이나 퍼니스 블랙(furnace black)으로 불리기도 한다.

카본 블랙은 오일 상태의 불순물을 함유하기도 한다.

카본 블랙은 페인트·인쇄용 잉크·구두광택제(shoe-polish) 등의 제조용 안료(顔料 : pigment)로 사용하며, 카본지의 제조·고무 공업에서 보강제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천연 흑연(natural graphite)(**제2504호**)
- (b) 고체연료 모양의 천연 탄소(무연탄·석탄·갈탄) ; 코크스(coke)·응결연료와 가스탄소(**제27류**)
- (c) **제3206호**의 특정 광물성 착색제인 블랙[예: 알루미늄블랙(alu black)·셰일블랙(shale black)·실리카블랙(silica black)]
- (d) 인조 흑연(graphite) ; 콜로이드 상태의 흑연과 반(半)콜로이드(semi-colloidal) 상태의 흑연(예: **제3801호**)
- (e) 활성탄과 애니멀 블랙(**제3802호**)
- (f) 목탄(wood charcoal)(**제4402호**)
- (g) 다이아몬드형의 결정형 탄소(crystalline carbon)(**제7102호와 제7104호**)

28.04 - 수소 · 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2804.10 - 수소
 - 희가스(rare gas)
- 2804.21 -- 아르곤
- 2804.29 -- 기타
- 2804.30 - 질소
- 2804.40 - 산소
- 2804.50 - 붕소와 텔루르
 - 규소
- 2804.61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 2804.69 -- 기타
- 2804.70 - 인
- 2804.80 - 비소
- 2804.90 - 셀렌

(A) 수소

수소(hydrogen)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거나 수성(水性) 가스 · 코크스로(coke-oven) 가스 · 탄화수소로부터 얻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非)금속 원소로 취급하며 두꺼운 철제 실린더에 가압하여 충전한 상태로 제시한다.

이는 기름과 지방(유지)의 수소화(고체 형태 지방의 조제) · 석유제품의 크래킹(cracking) · 암모니아 합성 · 금속의 절단이나 용접(산소-수소 발염장치)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제2845호** 해당하는 중수소(deuterium)(안정한 수소 동위원소)와 **제2844호** 해당하는 삼중수소(tritium)(방사성 수소 동위원소)를 **제외한다**.

(B) 희가스(rare gas)

“희가스(rare gas)”[불활성가스(inert gas)]는 다음에 열거한 원소이며 화학적으로 다른 원소와의 친화력이 부족하며 전기적 성질이 있고 특히 고압의 방전 작용 하에서 유색광선(예: 네온사인)을 방출하는 특징이 있다.

- (1) **헬륨(helium)**(비인화성으로 예를 들어 풍선 기구를 부풀이는데 사용된다)
- (2) **네온(neon)**[장미색의 등황색 광을 내거나, 수은증기 존재 하에서 결합하여 “데이라이트(daylight)”의 빛을 나타낸다]
- (3) **아르곤(argon)**(무색이며 무취로서, 전구 속에 불활성 공기를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 (4) **크립톤(krypton)**(아르곤과 동일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색광용에 사용한다)

(5) 크세논(xenon)(청광을 나타낸다)

희가스(rare gas)는 액체 공기를 분별(fractionating)하여 얻거나 (헬륨의 경우) 천연가스로부터 얻는다. 이들은 가압 하에서 제시한다.

라돈(radon)은 방사성 원소인 라듐(radium)이 붕괴하면서 형성되며 제2844호에 해당되는 방사성 불활성가스이다.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이 호에는 다음의 그 밖의 비(非)금속 원소를 분류한다.

(1) 질소(nitrogen)

이는 불에 타지도 않고 연소를 지지하지도 않는 가스이며 불꽃을 소화시킨다. 이는 액체 공기를 분류하여 얻으며 철제 실린더에 압력 하에서 충전하여 제시한다.

이는 주로 암모니아와 칼슘시아나미드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전구 내 불활성 공기를 충전하는데 사용한다.

(2) 산소(oxygen)

이는 연소 지지성의 기체로서 주로 액체 공기를 분류하여 얻는다.

이는 철제 실린더에 가압 하에서나 이중벽의 용기에 액체로 제시한다.

가압한 산소는 철과 같은 금속을 절단이나 용접할 때, 수소와 아세틸렌과 결합하여 산화수소와 산소아세틸렌 불꽃 램프에 사용한다. 또한 산소는 철강 야금(冶金)공업과 의약품용(흡입)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오존(ozone)**이 포함되는데 산소의 동소체(allotropic form)로서 전기스파크나 방전(discharge)의 작용으로 얻는다. 이는 물의 살균(ozonisation)·건성 기름(drying oil)의 산화·면(綿)의 표백·방부제와 치료목적에 사용한다.

(3) 붕소(boron)

붕소는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인 밤색 고체이며 야금(冶金)공업과 열 제어기·고감도의 온도계 제조에 사용한다.

감속중성자(slow neutron)의 흡수도가 높으므로 붕소는 순수한 것이거나 철강과 합금된 상태에서 원자로용 가동성의 제어봉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4) 텔루르(tellurium)

비중이 6.2의 무정형이나 결정 모양의 고체이다. 비교적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양호하며 특정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정 합금[예: 텔루르-납 합금]과 가황제로 사용한다.

(5) 규소(silicon)

규소는 전기아크로(爐 : electric arc-furnace)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환원법(carbothermal reduction)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는다. 이는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약하며 유리보다 경질이고 밤색 가루나 부정형의 덩어리(lump) 모양이다. 이는 금속광택을 가진 회색 바늘 모양으로 결정화된다.

규소는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결정인상법(crystal pulling)에 의하여 얻어진 고(高) 순도의 규소는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실린더 모양이나 봉 모양으로 된 것도 있으며 ; 붕소·인 등으로 도포된 것은 예를 들면, 다이오드·트랜지스터(transistor)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와 태양전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규소는 야금(冶金)공업(예: 철이나 알루미늄 합금)과 규소화합물(예: 사염화 규소) 제조에 사용한다.

(6) 인(phosphorus)

인은 전기로에서 모래와 탄소를 혼합하여 광물성 인염을 처리하여 얻는 유연한 고체이다.

주로 두 종의 인이 있다.

(a) **백인("white" phosphorus)** : 황색의 투명한 고체로 독성이 있어 처리하는데 위험하며 발화성이 높다. 이는 봉 모양으로 성형되어 흑색 유리제 용기·석제 용기나 때로는 금속제 용기에 물을 채우고 저장하며 ; 이 용기는 결빙(結氷)하도록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b) **적인(red phosphorus)** : "무정형(amorphous)"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결정일 수 있다. 이는 불투명의 고체로 비독성·비인광성이며 백인("white" phosphorus)보다 활성이 적고 비중은 크다. 적인은 발화성 성냥 화합물의 제조나 촉매(비환식산의 염소치환의 경우)로 사용한다.

특정 의약품은 인(phosphorus)을 함유한다(예: 인화된 대구의 간 기름). 또한 쥐약과 인산·하이포아인산염·인화칼슘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7) 비소(arsenic)

비소[비소의 레굴러스(regulus of arsenic)]는 천연의 비소황철광에서 추출한 고체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a) 소위 "금속" 비소 : 광택이 있고 회색 금속 결정이며 잘 부서지기 쉽고 물에 녹지 않는다.

(b) 황색비소 : 결정성이며 다소 불안정하다.

비소는 이황화비소·탄환·경(硬)브론즈(hard bronze)와 그 밖의 여러 가지의 합금(주석·구리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8) 셀렌(selenium)

셀렌은 황과 유사하며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a) 무정형의 셀렌으로 적색의 플레이크(flake) 모양의 것(flower of selenium)

(b) 유리 모양의 셀렌으로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약하며 부서진 면이 빛나며 갈색이나 적색을 나타내는 것

(c) 결정형의 셀렌으로 회색이나 적색이며 특히 빛에 노출되면 비교적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양호하며 광전지의 제조(도프상인 경우)와 반도체 디바이스(device)의 제조와 사진용에 사용하며 분말(적색 셀렌)인 경우는 고무와 특수 렌즈 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서는 콜로이드 상태 현탁액(suspension)[의약품으로 사용]인 셀렌(selenium)을 **제외한다(제30류)**.

이 표에서 안티모니(antimony)는 금속원소로 분류한다(**제8110호**).

이 그룹의 비(非)금속 원소 가운데는[예: 실리콘과 셀렌(selenium)] 전자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붕소·인 등의 원소를 가지고 보통 100만분의 1단위 비율로 도프 처리한 것도 있다. 이들은 가공하지 않은 형태의 것이나 실린더 모양이나 봉 모양의 것으로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디스크 모양·웨이퍼(wafer)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에 분류한다.

28.05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 나트륨

2805.12 -- 칼슘

2805.19 -- 기타

2805.3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5.40 - 수은

(A) 알칼리금속

5종의 알칼리금속은 유연하고 비교적 가벼우며 냉수에서 분해되고 ; 공기 중에서 변질되어 수산화물을 형성한다.

(1) 리튬(lithium)

이는 이 그룹에서 가장 가볍고(비중=0.54) 단단하다. 이는 광물유와 불활성가스에 보존된다.

리튬은 금속의 질을 개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합금(예: 내마모성 합금)에 사용한다. 이는 다른 원소와의 친화력이 강하므로 특히 순수 상태의 그 밖의 금속을 얻는데 사용한다.

(2) 나트륨(sodium)

금속광택을 가진 고체(비중=0.97)로 절단 후 단면이 쉽게 녹(鎊)이 나며 광물유(鑛物油)나 용접한 밀폐통에 보존한다.

나트륨은 용해한 염화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을 전해하여 얻는다.

이는 과산화나트륨[“이산화물(dioxide)”]·시아나이드나트륨·소다마이드(sodamide) 등의 제조와 인디고(indigo)공업·폭약의 제조(화학적인 뇌관과 퓨즈)·부타디엔(butadiene)의 중합·내마모성 합금·티탄과 지그코늄(zirconium)의 야금(冶金)공업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아말감 나트륨(sodium amalgam)은 **제외한다(제2853호)**.

(3) 칼륨(potassium)

은백색의 금속(비중=0.85)으로 보통 칼로 절단할 수 있으며 광물유(鑛物油)나 밀봉한 앰플에 보존한다.

칼륨은 사진용 광전지와 내마모성 합금 제조에 사용한다.

(4) 루비듐(rubidium)

은백색의 고체(비중=1.5)로 나트륨보다 가용성이 크며 밀봉한 앰플과 광물유(鑛物油)에 보존한다.

나트륨과 같이 내마모성 합금에 사용한다.

(5) 세슘(caesium)

은백색이거나 황색의 금속(비중=1.9)으로 공기와 접촉하면 발화하며 ; 가장 쉽게 산화되는 금속으로 ; 밀봉한 앰플이나 광물유(鑛物油 : mineral oil)에 보존한다.

방사선 알칼리 금속인 프란슘(francium)은 **제외한다(제2844호)**.

(B) 알칼리토류금속

3종의 알칼리토류금속(alkaline-earth metal)은 가단성(可鍛性)이 있고 냉수에서 쉽게 분해되며 ; 이들은 습한 공기(damp air) 중에서 변질된다.

(1) 칼슘(calcium)

산화칼슘을 알루미늄 열 환원을 하거나 용해한 염화칼슘을 전해하여 얻으며 백색금속(비중=1.57)으로 아르곤의 정제·구리나 철강의 정련·지르코늄·수소화칼슘·내마모성 합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2) 스트론튬(strontium)

백색이거나 담황색의 금속으로 연성(ductile)이 있으며 비중은 2.5%이다.

(3) 바륨(barium)

백색의 금속(비중=4.2)으로서 ; 내마모성 합금(anti-friction alloy)과 진공관의 게터(getter)의 제조에 사용한다(**제3824호**).

이 호에서 라듐(radium)(방사성 원소)(**제2844호**)·마그네슘(**제8104호**)·베릴륨(beryllium)(**제8112호**)은 **제외하며** ; 이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유사한 알칼리토류금속이다.

**(C)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금속(“희토”라는 용어는 그의 산화물에 적용한다)이나 란타논(lanthanon)은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57에서 71까지의 원소를 의미한다.

세륨 족	테르븀 족	에르븀 족
57. 란탄	63. 유로퓸	66. 디스프로슘
58. 세륨	64. 가돌리늄	67. 홀뮴
59. 프라세오디뮴	65. 테르븀	68. 에르븀
60. 네오디뮴		69. 툴륨
62. 사마륨		70. 이테르븀
		71. 루테튬

프로메튬(promethium)(원소 61)은 방사성 물질로 **제2844호**에 분류한다.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금속은 일반적으로 희색이거나 황색으로 연성(ductile)과 가단성(可鍛性)이 있다.

(*) 원소의 원자번호는 원소의 1원자가 함유하는 궤도전자의 총수(양자의 총수)이다.

세륨(cerium) : 이 족 중 가장 중요하며 모나자이트(monazite)[희토류(稀土類) 인산염]나 토륨석[희토류(稀土類) 규산염]으로부터 토륨을 제거한 후에 얻고 환원제로서 칼슘이나 리튬을 사용하여 할로겐화물의 금속열 환원으로 얻거나 용융(溶融 : fused) 염화물의 전기분해로 얻어진다. 이 물질은 회색의 연성(延性)이 있는 금속으로 납보다 다소 단단하며, 거친 표면에 문지르면 스파크가 일어난다.

란탄(lanthanum) : 세륨염 중에 불순한 상태로 존재하며 청색유리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스칸듐(scandium)**과 **이트륨(yttrium)**을 분류하는데 이들은 희토류(稀土類) 금속과 아주 유사하며 또한 **스칸듐(scandium)**은 철족(iron group)의 금속과도 유사하다. 이들 두 금속은 토르트바이타이트(thortveitite)광석·이트륨과 그 밖의 원소를 함유하는 스칸듐의 규산염에서 추출한다.

이들 원소는 상호 혼합하거나 상호 합금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미쉬메탈(Mischmetal)”을 포함한다. “미쉬메탈”은 세륨을 45%부터 55%, 란타늄을 22%부터 27%까지, 그 밖의 란타논(lanthanon)·이트륨과 그 밖의 불순물(5% 이하의 철·소량의 실리콘·칼슘·알루미늄)을 함유한 합금이다. “미쉬메탈”은 주로 야금(冶金)과 라이터들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5% 초과철·마그네슘이나 그 밖의 금속을 함유하는 합금은 다른 호에 분류한다(예: 발화합금의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제36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희토류(稀土類) 금속·이트륨·스칸듐의 염과 화합물은 **제외한다(제2846호)**.

(D) 수은

수은(mercury : quicksilver)은 실온(室溫)에서 액체인 유일한 금속원소이다.

이는 천연 황화수은[주사(朱沙 : cinnabar)]을 구워서 얻으며 여과·감압(減壓) 증류하거나 묽은 질산으로 처리하여 광[납·아연·주석·비스무트(bismuth)]에 함유된 다른 금속으로부터 분리해 낸다.

수은은 매우 광택이 있는 은색의 액체로 무겁고(비중=13.59) 독성이 있으며 귀금속을 침식하는 성질이 있다. 실온(室溫)에서 순수한 수은은 공기에 노출하면 변화하지 않으나 불순한 수은은 갈색의 산화수은이 도포된다. 수은은 특수 철제용기[“플라스크(flask)”]에 넣어 제시한다.

수은은 제2843호나 제2853호의 아말감(amalgam) 제조에 사용하며 금의 야금(冶金)이나 은의 야금(冶金)공업·금과 은의 도금 공업과 염소·수산화나트륨·수은염·주(朱 : vermilion)와 뇌산염에 사용한다. 또한 수은등과 여러 물리적 계기·의약 등에 사용한다.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제2806호 - 제2811호)

총설

산(acid)은 금속[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이온(ion), 예를 들면, 암모늄(NH₄⁺)]으로 일부나 전부를 치환할 수 있는 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치환하면 염을 생성한다. 산은 염기와 반응하여 염을 생성하며 알코올과 반응하여 에스테르(ester)를 생성한다. 액체 상태나 용액에서는 산은 전기 분해되어 음극에서 수소가 발생한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산에서 1분자 이상의 물을 제거할 경우는 산무수물을 얻으며 대부분의 비(非)금속 산화물은 산무수물이다.

이 절에는 **비(非)금속의 무기 산소화합물**[무수물(無水物 : anhydride)과 그 밖의 것]·**무기 산**[양극기가 비(非)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분류한다.

한편 이 호에는 금속산화물이나 금속수산화물로 각각 생성된 산과 산무수물은 **제외하며** ; 이들은 일반적으로 **제4절에** 해당한다[예: 크로뮴(chromium)·몰리브덴(molybdenum)·텅스텐(tungsten)과 바나듐(vanadium)의 산과 산무수물과 같은 금속의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물].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한다[예: **제2843호**(귀금속의 화합물)·**제2844호**나 **제2845호**(방사성 원소와 동위원소)·**제2846호**[희토류(稀土類)금속·스칸듐이나 이트륨의 화합물].

또한 수소의 산소화합물은 **제외하며** **제2201호**(물)·**제2845호**[중수(重水 : heavy water)]·**제2847호**(과산화수소)나 **제2853호**[중류수·전도도수(傳導度水 : conductivity water)·이와 유사한 순수·이온교환매체로 처리된 물]에 분류한다.

28.06 -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10 - 염화수소(염산)

2806.20 - 클로로황산

(A)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염산 : hydrochloric acid)

염화수소(HCl)는 질식성의 냄새에 무색의 훈증가스(fuming gas)이며 염소에 수소(또는 물과 코크스의 작용)를 반응시키거나 염화나트륨에 황산을 반응시켜 얻는다.

이를 가압하면 쉽게 액화하며 물에 대단히 잘 녹는다. 가압 하에서 액화하여 철제 용기에 넣고, 농축한 수용액(水溶液)(보통 28%나 38%)(염산·muriatic acid·spirits of salt)은 유리나 도자기로 만든 용기, 고무를 내장한 탱크차나 탱크 왜건에 넣어 제시한다. 이 매콤한 냄새가 있는 용액은 불순물(염화제이철·비소·이산화황·황산)을 함유하고 있다면 황색을 띄고 순수하면 무색이다. 농축한 용액은 습한 공기 중에서 흰 연기를 발생한다.

염산(hydrochloric acid)은 용도가 다양하다. 즉, 철·아연과 그 밖의 금속의 산(酸)세척·골(bone)로부터 젤라틴 추출·애니멀 블랙(animal black)의 정제·금속염화물의 제조 등이다. 염화수소 가스는 자주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예: 클로로프렌(chloroprene)·염화비닐·인조 장뇌(artificial camphor)·염화고무 등의 제조].

(B) 클로로황산[chlorosulphuric acid(chlorosulphonic acid)]

클로로황산(chlorosulphuric acid)은 상거래 관습상 클로로술폰산[chlorosulphonic acid (“sulphuric chlorohydrin”)]으로 불리며 ClSO_2OH 의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으며 염화수소에 삼산화황이나 발연 황산을 건조화합하여 얻는다.

이는 고도의 부식성이 있고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무색이나 갈색의 액체이다. ; 이것은 습한 공기에서 발연하며 물과 접촉하거나 가열하면 분해된다.

이는 유기 합성[사카린(saccharin) · 티오인디고(thioindigo)와 인디고졸(indigosol)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하이포아염소산(hypochlorous acid) · 염소산(chloric acid)과 과염소산(perchloric acid)은 **제외한다** (**제2811호**). 이염화이산화황[염화술퍼릴(sulphuryl chloride)](**제2812호**)도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는 “클로로 황산”으로 잘못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28.07 - 황산과 발연황산

(A) 황산(sulphuric acid)

황산(H_2SO_4)은 주로 산소와 이산화황을 촉매(백금·산화철·오산화바나듐 등)를 통하여 반응시켜 얻는다. 불순물[질소화합물·비소물품이나 셀렌철(seleniferous)물품·황산납]은 황화수소나 황화암모늄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황산은 부식성이 대단하며 비중이 크고 기름 상태의 액체로서 불순물이 없을 때는 무색이며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는 황색이나 갈색이다. 이는 물과 접촉하면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피부를 파괴하며 대부분의 유기물을 탄화시킨다.

상거래 관습상의 황산은 H_2SO_4 77%부터 100%까지를 함유한다. 이것은 상자나 바구니를 씌운 유리병(carboy of glass)·철제 드럼통·탱크 트럭·탱크 왜건이나 탱크선(tank ship)에 담아 제시한다.

이 산(酸)은 여러 화학공업 즉 비료의 제조·폭발물의 제조·무기안료의 제조, 특히 석유공업과 철강공업에 사용한다.

(B) 발연황산(oleum)

발연황산[oleum(fuming sulphuric acid)]은 과량의 삼산화황(80%까지)을 흡수시킨 황산이다. 발연황산은 갈색인 액체이거나 고체로 ; 물과 맹렬히 반응한다. 이들은 피부·의류를 상하게 하고 위험한 증기(특히 유리 삼산화황)를 발산한다. 이는 유리로 만든 용기, 도자기로 만든 용기나 철제의 용기에 넣어 제시한다.

발연황산은 유기화학에서 황산화 반응[나프탈렌술폰산(naphthalenesulphonic acid)·히드록시안트라퀴논(hydroxyanthraquinone)·티오인디고(thioindigo)·알리자린 유도체(alizarin derivative)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클로로황산(chlorosulphuric acid : "sulphuric chlorohydrin")과 황질산(sulphonitric acid)(각각 제2806호와 제2808호)
- (b) 삼산화황·황산수소·과황산·술폰산과 티오닉계열의 광산(鑛酸)[폴리티오닌산(polythionic acid)](제2811호)
- (c) 염화티오닐과 염화술폰릴(제2812호)

28.08 - 질산과 황질산**(A) 질산(nitric acid)**

질산(HNO_3)은 주로 촉매(백금·철·크로뮴·비스무트·산화망간 등)를 사용하여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얻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질소와 산소를 직접 전기-아크로(electric-arc furnace)에서 화합하여 산화질소를 얻고 이를 산화하여 얻기도 한다. 또한 천연 질산나트륨에 황산(단일이나 이황산나트륨을 첨가한 것)을 반응시켜 제조되기도 하며; 불순물(황산과 염산·질소증기)은 증류와 열공기로 제거한다.

질산은 무색이나 황색으로 독성이 있는 액체이다. 농축(발연질산)한 경우는 황색의 증기를 발산한다. 또한 강력한 산화제(oxidising agent)이므로 피부와 유기물을 상하게 하며; 유리로 만든 용기·도자기로 만든 용기·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에 넣어 제시한다.

이는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즉, 질산염(은·수은·납·구리 등의 것)의 제조·유기염료·폭약·니트로글리세롤(nitroglycerol)·콜로디온면(collodion cotton)·트리니트로톨루엔(trinitrotoluene)·피크르산(picric acid)·뇌산수은(mercury fulminate) 등; 금속의 산(酸)세척(특히 주철의 산세척)·구리판의 조각·금이나 은의 정제에 사용한다.

(B) 황질산(sulphonitric acids)

황질산(sulphonitric acid)은 농축된 질산과 농축된 황산의 일정량(예: 같은 양)을 가한 혼합물이다. 이는 고도의 부식성이 있는 점성 액체로서 일반적으로 철제 드럼에 넣어 제시한다.

이는 특히 합성 염료공업에서 유기물의 질화,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와 폭약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아미노황산(술폰민산 : sulphamic acid)(**제2811호**)(위에서 설명한 황질산과 혼동치 말 것)
- (b) 아지화 수소(hydrogen azide)·아질산(nitrous acid)·질소의 여러 산화물(**제2811호**)

28.09 -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 오산화인

2809.20 - 인산과 폴리인산

이 호에는 오산화인·인산(오르토인산이나 인산)·피로인산(이중인산)·메타인산과 그 밖의 폴리인산을 분류한다.

(A) 오산화인(diphosphorus pentaoxide)

오산화인(P_2O_5 ·무수인산)은 천연 인산염에서 추출한 인을 건조한 공기 중에서 연소하여 얻는다. 이는 부식성이 강한 백색 분말로서 흡수성이 강력하며 밀폐용기에 포장하여 수송한다. 오산화인은 가스 건조와 유기 합성 등에 사용한다.

오산화인은 결정 모양·무정형이거나 유리 모양의 형태가 있으며 이 세 가지 형태를 혼합한 “포스포릭 스노우(phosphoric snow)”도 이 호에 분류한다.

(B) 인산(phosphoric acid)

인산(오르토인산이나 정인산, H_3PO_4)은 천연인산삼칼슘에 황산을 반응시켜 얻는다. 이와 같이 제조한 상거래 관습상의 인산은 오산화인·인산이수소칼슘·삼산화황·황산·플루오르화규소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순수 인산은 오산화인을 수화(hydration)하여 얻는다.

인산은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 있는 프리즘형 결정이므로 고체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는 보통 수용액(水溶液)(예: 65%, 90%)으로 보존한다. 실온(室溫)에서 과포화시킨 농축용액은 때로는 “시럽상 인산(syrupy phosphoric acid)”으로 알려져 있다.

인산은 농축(삼중)한 과인산염 제조에 사용하고 ; 섬유공업·녹제거제로 사용한다.

인산은 고온에서 축합하여 피로인산(이중인산)·메타인산과 그 밖의 폴리인산과 같은 여러 형태의 중합산(polyphosphoric acid)을 만든다.

(C) 폴리인산(polyphosphoric acid)

(I) P-O-P원자로 교대적인 특성을 갖는 산(acid)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산은 오르토인산의 2분자 이상이 축합하여 물이 제거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 같이 일 반식 : $H_{n+2}P_nO_{3n+1}$ (n : 2나 그 이상)의 선산(linear acid)계열과 일반식 : $(HPO_3)_n$ (n : 3이나 그 이상)의 환상(cyclic)계열로 된다.

(1) 피로인산(이중인산· $H_4P_2O_7$)은 오르토인산을 열조정하여 만들어지고 습한 공기에서는 불안정하여 오르토산으로 쉽게 재전환한다.

- (2) 메타인산은 환식산[예: **환식** 삼중인산(HPO_3)₃과 **환식** 사중인산(HPO_3)₄]으로서 폴리인산(다중인산)[오산화인(P_2O_5)을 86% 초과 함유]을 소량 혼합하고 있다. 빙상(氷狀)의 폴리인산(다량인산)(상거래 관습상의 메타인산)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폴리인산(다중인산)(주로 선식다중인산)의 혼합물로서 이 호에 분류하며 이는 적열(赤熱)할 경우는 증발하여 유리 상태의 덩어리로 되며 비결정성이다.

메타인산은 고도의 흡습성이며 가스 건조에 사용한다.

- (3) P-O-P타입의 그 밖의 폴리인산(다중인산)은 주로 혼합물이며, “폴리인산”이나 “과인산”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된다. 이는 삼중인산($\text{H}_5\text{P}_3\text{O}_{10}$)과 사중인산($\text{H}_6\text{P}_4\text{O}_{13}$)과 같은 계열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 호에 분류한다.

(II) 그 밖의 폴리인산(polyphosphoric acid : 다중인산)

이 부분에 속하는 폴리인산은 특히 하이포인산[이중인산(diphosphoric(IV)acid)]($\text{H}_4\text{P}_2\text{O}_6$)이며 이 화합물은 이수화물(dihydrate)의 결정체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보존하여야 하고 묽은 용액에서는 매우 안정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그 밖의 아인산과 그 무수물(無水物)[포스폰산(phosphonic acid)과 그 무수물(無水物)·포스핀산(phosphinic acid)](**제 2811호**)
- (b) 인화수소(**제 2853호**)

28.10 -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A) 붕소의 산화물

삼산화 이붕소(diboron trioxide)(B_2O_3)는 투명한 유리 상태의 덩어리·결정이나 백색 플레이크 모양으로 존재한다.

이는 휘발성 금속 플루오르화물과 반응하여 합성 귀석과 합성 반귀석[커런덤(corundum)·사파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붕소의 모든 산화물을 분류한다.

(B) 붕산

붕산(오르토붕산)(H_3BO_3)은 천연 붕산염을 산으로 분해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붕산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이는 가루 형태나 작은 조각 모양·운모성의 플레이크(flake)나 유리 모양의 덩어리가 있으며 가장자리가 투명하고 회색이나 청색(결정화한 산)이며 무취로서 기름과 같은 촉감이 있다.

이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방부제(붕산수)·붕규산염유리(저팽창 계수)·유리화합물·가이그넷 녹색(Guignet's green) 안료(顔料)(산화크로뮴의 수화물)·인조 붕산염(붕사)·히드록시-안트라퀴논(hydroxy-anthraquinone)·아미노-안트라퀴논(amino-anthraquinone)의 제조; 양초 심지의 주입·방화 의류 제조에 사용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붕산은 건조 중량으로 계산하여 붕산의 함량이 85% 이하일 때는 **제2528호**에 해당하며 붕산의 함량이 85%를 초과할 경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메타붕산(HBO_2)_n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특품을 **제외한다**.

- (a) 사플루오르화 붕산(tetrafluoroboric acid)(플루오르화붕산)(**제2811호**)
- (b) 글리세로붕산(glyceroboric acid)(**제2920호**)

28.11 -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그 밖의 무기산

2811.11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2811.12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2811.19 -- 기타

-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 이산화탄소

2811.22 -- 이산화규소

2811.29 -- 기타

이 호에는 광산(mineral acid)과 광산의 무수물(無水物)·그 밖의 비(非)금속의 산화물을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비(非)금속의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A) 플루오르 화합물

(1) 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플루오르화수소산(HF)]. 천연플루오르화칼슘[플루오라이트(fluorite)]나 빙정석(氷晶石)에 황산을 반응시켜 얻는다. 탄산칼륨으로 처리하거나 증류(때로는 불순물로서 소량의 규산염과 플루오르화규산을 함유)하여 정제한다. 무수(無水) 상태의 플루오르화수소는 강력한 흡습성 액체(끓는점 섭씨 18도 ~ 20도)로서; 습한 대기에서 발연한다. 무수(無水)상태와 농축한 용액에서는 피부를 깊이 태우며 유기물을 탄화한다. 납·구타페르카(gutta-percha)나 세레신(ceresine) 왁스로 내장한 금속용기, 고무와 플라스틱 용기에 보존하며; 매우 순수한 플루오르화수소산은 은으로 만든 플라스크(flask)에 보존한다.

이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유리의 식각(etching)·무회(ashless) 여과지 제조·탄탈륨의 제조·플루오르화물의 제조·주조용·유기 합성 등이나 발효과정의 억제제로 사용한다.

(2) 플루오르화수소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플루오르화사붕소(HBF₄)

(b) 육플루오르화규산(H₂SiF₆) 예: 과인산염을 제조 할 때 부산물이나 플루오르화규소로부터 얻는 용액. 이는 주석과 납의 전해정제·플루오르화규산염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B) 염소 화합물

이 화합물들의 중요한 것은 강력한 산화제와 염소치환제로서 표백과 유기 합성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하이포아염소산(HClO): 흡입하면 위험한 물질로 유기 물질에 접촉하면 폭발한다. 이 가스는 수용액(水溶液)으로 제시하며 황색이나 때로는 적색이다.

(*) 다음 순서와 같다: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황·셀렌·텔루르·질소·인·비소·탄소·규소

- (2) **염소산(HClO₃)** : 이 산은 무색이나 황색의 수용액(水溶液)으로 존재한다.
- (3) **과염소산(HClO₄)** : 다소 고도로 농축된 이 물질은 여러 수화물을 얻으며 피부를 상하게 하고 분석에 사용한다.

(C) 브롬 화합물

- (1) **브롬화수소(HBr)** : 무색으로서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기체로 가압하거나 수용액(水溶液) 상태에서 보존 될 수 있으며 공기 중에서 서서히 분해된다(특히 빛의 작용으로 분해). 브롬화수소산은 브롬화물의 제조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브롬산(HBrO₃)** : 수용액(水溶液)으로 존재하며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D) 요드 화합물

- (1) **요드화수소(HI)** : 무색의 질식성 가스로 쉽게 분해된다. 농축한 경우는 습한 공기에서 발연하는 부식성 수용액(水溶液)으로 존재한다(요드화수소산). 환원제나 요드 고착용 매체로 사용한다.
- (2) **요드산(HIO₃)**과 **그 무수물(I₂O₅)** : 프리즘의 결정 상태나 수용액(水溶液)으로 존재하며 가스 마스크의 흡착제와 의약에 사용한다.
- (3) **과요드산(HIO₄ · 2H₂O)** : 요드산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

(E) 황 화합물

- (1) **황화수소(H₂S)** : 독성이 강한 무색의 기체로 썩은 계란 냄새를 가지고 있다. 가압 상태에서 철제실린더에 충전이나 수용액(水溶液)으로 제시한다(황화수소산). 분석 · 황산과 염산의 정제 · 이산화황이나 재생황 등에 사용한다.
- (2) **과산화황산(과황산)** : 결정형으로 제시한다.
(a) 과산화이황산(과황산)(H₂S₂O₈)과 그 무수물(S₂O₇)
(b) 과산화일황산(카로산 : Caro's acid)(H₂SO₅) : 흡습성이 크며 ; 강력한 산화제이다.
- (3) **티온산(thionic acid)** : 수용액(水溶液)으로만 존재한다. 디티온산(H₂S₂O₆) ; 트리티온산(H₂S₃O₆) ; 테트라티온산(H₂S₄O₆) ; 펜타티온산(H₂S₅O₆)
- (4) **술파민산[aminosulphonic acid(sulphamic acid)](SO₂(OH)NH₂)** : 황산삼산화황이나 발연 황산에 요소를 용해하여 얻으며 ; 결정으로 약간 물에 녹으며 알코올에 쉽게 용해된다. 방화 의류의 제조 · 유연 · 전기도금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5) **이산화황(SO₂)** : 황의 연소 · 천연 황화물(특히 황철광)의 열처리 · 천연 황산칼슘[예: 무수(無水)석고]에 점토와 코크스를 가하여 열처리하여 얻으며 무색의 질식성 가스이다.

이산화황은 가압 하에서 액화하여 철제용기에 넣거나 수용액(水溶液)으로 하여 제시하며 후자는 상거래 관습상 때로는 “아황산(sulphurous acid)”으로 잘못 지칭되기도 한다.

강력한 환원작용과 표백작용이 있어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동물성 섬유·보릿짚·깃털(羽)과 젤라틴의 표백·원당 정제 시 아황산염처리·과실과 채소의 보존·목재필프의 처리용·산성아황산염의 조제·황산의 제조나 살균제(포도주의 발효 억지용) 등이다. 액체 이산화황은 증발 온도가 낮으므로 냉동기에 사용한다.

(6) 삼산화황(sulphuric anhydride)(SO₃) : 어느 정도 외관이 석면(asbestos)과 유사한 바늘 모양결정으로 백색 고체이다. 습한 공기 중에서 발연하며 ; 물을 흡수하여 맹렬히 반응한다. 공기를 밀폐한 철제 용기·유리 용기나 도자기 용기에 제시하는데 이 용기는 무기흡습제를 함유하는 장치를 부착시킨다. 이는 발연황산(oleum)(제2807호)과 명반(alum)(제2833호)의 제조에 사용한다.

(7) 삼산화이황(S₂O₃) :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ce)이 있는 녹색 결정으로 물에 분해되며 알코올에 녹고 ; 합성 염료의 제조에서 환원제로 사용한다.

(F) 셀렌 화합물

(1) 셀렌화수소(H₂Se) : 악취가 나는 가스로 후각 신경을 마비시키므로 흡입하면 위험하다. 불안정한 수용액(水溶液)으로 제시한다.

(2) 아셀렌산(H₂SeO₃)과 그 무수물(SeO₂) : 육각형의 백색결정으로 조해성(潮解性)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 에나멜 공업에 사용한다.

(3) 셀렌산(H₂SeO₄) : 백색의 결정으로 무수물(無水物)이거나 수화물이다.

(G) 텔루르 화합물

텔루르화수소(H₂Te)[수용액(水溶液) 상태], 아텔루르산(H₂TeO₃)과 그 무수물(TeO₂)(백색 고체)·텔루르산(H₂TeO₄)(무색결정)과 그 무수물(TeO₃)(오렌지색의 고체)이 있다.

(H) 질소 화합물

(1) 아지화수소(히드라조산)(HN₃) : 무색의 질식성 냄새가 있는 독성액체로 ; 물에 잘 녹고 ; 불안정하며 폭발성이 있다. 이의 염[아지드화물(azide)]은 **제2850호**에 해당되며 제5절에서 제외한다.

(2) 산화이질소(nitrous oxide)(N₂O) : 감미(sweet-tasting)가 있는 가스로서 물에 녹으며 액체 상태로 제시한다. 기체 상태에서는 마취제(anaesthetic),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에서는 냉동제로 사용한다.

(3) 이산화질소(nitroxyl, nitrous vapour, “nitrogen peroxide”)(NO₂) : 섭씨 0℃에서 무색의 액체이며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등갈색(orange-brown)이나 ; 끓는점(boiling point)은 약 섭씨 22℃(이때 적색의 연기가 발생한다)이다. 이는 산화질소 상태에서 가장 안정하며 강력한 산화제이다.

(I) 인 화합물

(1) 포스핀산(하이포아인산)(H₃PO₂) : 엷은 판 모양의 결정(crystal)으로 약 섭씨 25℃에서 녹으며 공기에 노출하면 산화되고 ; 강력한 환원제이다.

- (2) **포스폰산**(아인산)(H_3PO_3) : 조해성(潮解性)의 결정으로 약 섭씨 71°C에서 용해하며 물에 녹인다. 또한 **이것의 무수물**(無水物)(P_2O_3 이나 P_4O_6)은 약 섭씨 24°C에서 녹는 결정으로 빛에 노출하면 처음에는 황색 그 후에는 적색으로 변하며 점차 분해된다.

(K) 비소 화합물

- (1) **삼산화비소**(As_2O_3) : “아비산”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한다. 이는 은과 니켈의 비철광이나 황 비철광을 구워서 얻으며 때로는 불순물(황화비소·황·산화 안티모니 등)을 함유한다.

상거래 관습상 삼산화비소는 일반적으로 결정성 백색 분말로 무취이며 강력한 독성이 있다(flower of arsenic). 유리 모양의 무수물(無水物)은 투명한 무정형의 덩어리이며 자기 모양 무수물(無水物)은 교차팔면체형의 불투명 결정이다.

이것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가죽과 동물 표본의 보존(때로는 비누와 혼합해서 사용한다) ; 쥐약 ; 과리잡이 끈끈이(fly-paper)의 제조 ; 특성의 유백제·유리질의 에나멜과 셀레 그린(Scheele's green)(비산구리 : copper arsenite)과 같은 광물성 녹색 안료(顔料) 슈바인푸르트(Schweinfurt) 녹색 안료(顔料)(copper acetoarsenite)의 제조 ; 소량복용 약품(피부병·말라리아와 천식치료용)

- (2) **오산화비소**(As_2O_5) : 삼산화비소의 산화나 비산의 탈수에 의하여 얻는다. ; 독성이 강한 백색 분말로 물에 천천히 녹아 비산이 되며 비산의 제조·산화제 등으로 사용한다.

- (3) **비산(arsenic acid)** : “비산”이라는 명칭은 오르토비산($H_3AsO_4 \cdot 4H_2O$)과 오산화비소의 그 밖의 수화물[피로(pyro-)나 메타 비소 등]에 붙여지는 것인데 무색의 바늘 모양 결정이고 맹독성이다.

비산은 합성염료[폭신(fuchsine) 등]·비산염·의약품이나 살충제로 사용하는 비소의 유기 유도체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비화수소(arsenic hydride)(예: AsH_3)는 **제외한다(제2850호)**.

(L) 탄소 화합물

- (1) **일산화탄소**(CO) : 독성이 있는 무색 무미의 가스로 ; 가압 상태에서 보존(put up)한다. 환원성은 특히 야금(冶金)공업에 사용한다.

- (2) **이산화탄소**(CO_2) : “탄산(carbonic acid)”으로 칭하는 것은 잘못이다. 탄소를 연소·석회물질을 가열하거나 산(acid)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이는 무색의 가스로 공기보다 1.5배 무겁고 소화성이 있다. 이산화탄소는 액체(철제 실린더에 압축한 것)이거나 고체[절연용기에 입방체로 압축한 것, “카본 스노우(carbonic snow)”나 “카본 아이스(carbonic ice)”]로 제시한다.

야금(冶金)·설탕제조나 청량음료 제조에 사용한다. 액체 이산화탄소(CO_2)는 맥주 제조·살리실산 제조·소화제 등에 사용하며 고체 이산화탄소는 냉동제 섭씨(영하 80°C까지 강하)로 사용한다.

(3) **시안화수소** · 시안화수소산(HCN) : 시안화물에 황산을 반응시키거나 암모니아와 탄화수소의 혼합물에 촉매를 작용시켜 얻는다.

맹독성의 무색 액체로서 아몬드의 쓴 냄새가 있다. 물보다 비중이 작고 물에 혼합하며 ; 불순하거나 약한 용액에서는 보존하기에 나쁘다.

시안화수소산은 유기 합성[예: 아세틸렌(acetylene)과 반응하여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의 제조]과 구충제로 사용한다.

(4) **이소시아산(isocyanic acid) · 티오시아산(thiocyanic acid)이나 뇌산(fulminic acid)**

(M) 규소 화합물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pure silica, silicic anhydride 등)](SiO₂) : 규산염 수용액(水溶液)을 산(acids)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열의 작용으로 분해하여 얻는다.

이는 무정형(백색 분말-“실리카화이트” · “실리카플라워” · “하소실리카(calcined silica)”, 유리 모양 입자-“vitreous silica”; 젤라틴의 상태-“실리카프로스트(silica frost)” · “수화 실리카(hydrated silica)”)이거나 결정형(tridymite와 cristobalite form)이다.

실리카(silica)는 내산성(耐酸性)이며; 용융 실리카(fused silica)는 갑자기 가열하거나 냉각하여도 깨지지 않는 실험실용 기구와 산업용 장치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제70류의 총설 참조). 미세한 분말 실리카(silica)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종류의 천연 · 합성고무와 그 밖의 탄성체의 충전제 · 여러 플라스틱 · 인쇄잉크 · 페인트 · 코팅과 접착제의 증점제(thickening agent)나 요변성제(thixotropic agent)로 사용한다. 수소-산소 로(爐)에서 사염화규소나 삼염화실란의 연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식(발열성) 실리카[fused(pyrogenic) silica]는 실리콘웨이퍼의 화학기계 연마나 여러 재료의 유도제(流渡劑 : free-flow agent)나 침강방지제(anti-settling agent)로 사용한다. 실리카 폼(silica fume)(실리콘 · 페로실리콘과 지르코니아 제품에서 부산물로 수집된다)은 또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concrete) · 섬유 시멘트(fibre cement)나 캐스터블 내화물(refractory castable)에서 포졸란(pozzolan) 첨가제로, 폴리머(polymer)에서 첨가제로 사용한다. 활성화된 실리카겔(activated silica gel)은 가스 건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천연 실리카[예: 석영과 규조토(硅藻土)](제25류, 귀석이나 반귀석을 구성하는 중은 제외-제7103호와 제7105호 해설 참조)

(b) 실리카(silica)의 콜로이드 현탁액(suspensions)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조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3824호에 분류한다(예: 제3809호의 직물드레싱제).

(c) 코발트염을 가한 실리카 겔(습도 지시제로 사용)(제3824호)

(N) 착산(complex acids)

이 호에는 또한 둘 이상의 비(非)금속 광산(鑛酸)(예: 클로로-산)이나 비(非)금속산(酸)과 금속산(예: 텅스토규산 · 텅스토붕산)으로 구성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착산을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서는 제외한다.

안티모니(antimony)는 이 표에서 금속으로 취급하므로 안티모니산과 산화안티모니는 제2825호에 해당한다.

제3절

비(非)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제2812호 - 제2813호)

총설

이 절에 분류하는 것은 제5절에서 분류하는 수소산의 금속염의 것과 유사한 염화물·황화물 등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비(非)금속과 결합한 것이다.

- (1) 수소나 산소를 제외한 비(非)금속과 할로겐원소와 결합한 것(할로겐 화합물)
- (2) (1)과 같은 화합물과 산소와 결합한 것(할로겐화 산화물)

또는 (3) 수소·산소를 제외한 비(非)금속과 황과 결합한 것(황화합물)

비(非)금속의 황화산화물[황+산소+비(非)금속]은 이 절에서 제외하고 ; 제2853호에 해당한다.

금속(제1절 총설 참조)이나 암모늄이온(HN_4^+)의 할로겐화물·산화할로겐화물·황화물은 귀금속의 화합물(제2843호)과 제2844호·제2845호·제2846호나 제2852호의 화합물을 제외하고는 제5절에 분류한다.

28.12 -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 2812.11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 2812.12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 2812.13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 2812.14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 2812.15 --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 2812.16 -- 설퍼 디클로라이드
- 2812.17 -- 티오닐 클로라이드
- 2812.19 -- 기타
- 2812.90 - 기타

(A) 비(非)금속의 염화물

중요한 이원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1) 염화요드(iodine chloride)

- (a) 염화요드(ICI)는 요드에 염소를 직접 반응시켜 얻는다. 섭씨 27도 이상에서는 암갈색 액체이고 그 온도 아래에서는 적색 결정이다. 비중은 약 3이며 물에 분해되고 ; 피부를 심히 태운다. 요드화제로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주로 유기 합성의 염화제로 사용하며 (예: 산염화물·염료 등의 제조) 세라믹 제조에서 광택효과를 내는데 사용한다.

(b) **삼염화요드**(ICl_3)는 모노클로라이드(monochloride)와 같은 방법으로나 요드화수소산에서 얻는다. 수용성의 황색 바늘 모양의 결정으로 비중은 약 3이고 모노클로라이드(monochloride)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며 의약에도 사용한다.

(2) 염화황(sulphur chloride)

(a) **일염화황**(S_2Cl_2)(다른 명칭은 “이염화이황”으로서, 구조식 Cl-S-S-Cl 을 의미하는 것이다) : 황에 염소를 반응하여 얻어진다. 이것은 상업시판용 염화황으로, 노란색이나 불그스름한 액체상태이고, 공기 중에 노출되면 질식성 악취가 나는 증기를 발산하며, 물에 의해 분해된다. 비중(比重)은 약 1.7이다. 황의 용제(溶劑)의 하나인 이것은 고무나 구타페르카(gutta-percha)의 저온 가황(cold vulcanisation)에 사용한다.

(b) **이염화황**(SCl_2)은 일염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적갈색 액체이며 물에 분해되는 불안정물이다. 비중은 약 1.6이고 고무의 냉가황제·합성염료[특히 티오인디고(thioindigo)] 제조의 염화제에 사용한다.

(3) 염화인(phosphorus chloride)

(a) **삼염화인**(PCl_3)은 인에 염소를 직접 반응시켜 얻으며 자극성 취를 가진 부식성 최루성의 무색 액체이고 비중은 약 1.6이다. ; 습한 공기에서는 발연하며 물에 접촉하면 분해된다. 주로 유기 합성의 염화제(예: 산염화물·염료 등) ; 또한 도자기 제조에서 광택효과를 얻는데 사용한다.

(b) **오염화인**(PCl_5)은 삼염화물에서 얻으며 백색이나 황색의 결정형이다. 비중은 약 3.6이고 삼염화물과 같이 습한 공기에서 발연하며 ; 물에 접촉하면 분해되고 최루성이 있다. 염화제와 촉매(예: 염화이사틴 제조)로서 유기화학에서 사용한다.

염화포스포늄(PH_4Cl)은 **제외한다(제2853호)**.

(4) 염화비소(arsenic chloride)

삼염화비소(AsCl_3)는 비소에 염소를 반응시키거나 삼산화비소에 염산을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의 기름같은 액체로서 습한 공기에서 발연하고 맹독성이다.

(5) 염화규소(silicon chloride)

사염화규소(SiCl_4)는 실리카(silica)와 석탄의 혼합물이나 규소·규소 청동이나 페로실리콘에 염소가스와 반응시켜 얻으며, 비중이 약 1.5인 무색의 액체이다. 습기 있는 공기는 질식성 흰 연기[염산(HCl)]을 발생하며, 물에 분해하여 젤라틴 모양의 실리카를 형성하고 염산 연기를 발생시킨다. 실리카(silica)와 매우 순수한 실리콘(very pure silicon), 실리콘(silicon)과 연막(smoke screen) 제조에 사용된다.

삼염화실란(SiHCl_3)과 같은 규소화수소의 치환물품은 **제외한다(제2853호)**.

이 호에는 사염화탄소(CCl_4)·육클로로에탄(C_2Cl_6)·육클로로벤젠(ISO)(C_6Cl_6)·옥타클로로나프탈렌(C_{10}Cl_8)과 이와 유사한 염화탄소는 **제외한다**. 이 같은 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는 **제2903호**에 분류한다.

(B) 비(非)금속의 산화염화물

이 삼원(ternary)의 화합물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 산화염화황(sulphur chloride oxide)

(a) 염화티오닐(산화이염화황·염화술피닐)(SOCl_2) : 삼산화황이나 염화술피닐 중 하나와 이염화황의 산화작용으로 얻으며 비중(比重)이 약 1.7인 무색액체로 질식성 증기를 발생하며 물에 분해된다. 유기염화물제조에 사용한다.

(b) 이산화이염화황(염화술피닐·염화술프릴)(SO_2Cl_2)은 햇빛에 노출하거나 촉매(장뇌나 황성탄)를 사용하여 이산화황에 염소를 반응시켜 얻으며 비중이 약 1.7인 무색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연하며 ; 물에 분해되고 ; 질식성이 있다. 유기 합성에서의 염소치 환제와 술폰치환제로서 사용한다(예: 산염화물 제조).

이 호에는 클로로황산(chlorosulfuric acid)(“sulphuric chlorohydrin”)(ClSO_2OH)은 제외한다(제2806호).

(2) 산화 이염화셀렌(selenium dichloride oxide)

이는 일반적으로 “염화셀레닐”(SeOCl₂)이라 칭하며 염화티오닐과 유사하다. 이산화셀렌에 사염화셀렌을 반응시켜 얻으며 섭씨 10도 이상에서는 황색 액체로서 공기 중에 발연하고 섭씨 10도 아래에서는 무색 결정으로 ; 비중은 약 2.4이고 물에 분해된다. 유기 합성·엔진의 실린더 내부 연소에서 탈탄소제로 사용한다.

(3) 염화니트로실(산화염화질소)(NOCl)

등황색 가스로서 질식성 냄새와 ; 독성이 있으며. ; 용도는 산화제이다.

(4) 옥시 염화인(산화삼염화인, 염화포스포릴)(POCl₃)

삼염화인에 산소산칼륨·사염화인에 붕산으로 처리하거나 제삼인산칼슘에 염화카보닐을 반응시켜 얻으며 비중이 약 1.7인 무색액체로 자극성 냄새가 있으며 습한 대기에서 발연하고 물에 분해된다. 유기 합성에서의 염소치환제와 무수초산이나 클로로술폰산의 제조에 사용한다.

(5) 이염화카르보닐(포스젠, 산화염화탄소, 염화카르보닐)(COCl₂)

애니멀 블랙(animal black)이나 목탄(charcoal) 존재 하에서 일산화탄소에 염소를 반응시키거나 사염화탄소에 발연 황산을 반응시켜 얻으며 섭씨 8도까지는 무색의 액체이며 섭씨 8도보다 고온에서는 기체이다. 액화하거나 두꺼운 철제 용기에 가압하여 제시한다. 톨루엔(toluene)이나 벤젠에 용해된 경우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

최루성과 맹독성이며 염소 치환제로서 유기 합성에 널리 사용한다[예: 산염화물·아미노유도체·미힐러 케톤(Michler's ketone)과 유기염료공업에서 중간체 제조].

(C) 비(非)금속의 그 밖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이 그룹에는 비(非)금속의 모든 그 밖의 할로겐화합물(플루오르화물·브롬화물·요드화물)을 포함한다.

(1) 플루오르화물(fluoride)

(a) **오플루오르화요드**(IF₅) : 발연성의 액체

(b) **플루오르화인(phosphorus fluoride)과 플루오르화규소(silicon fluoride)**

(c) **삼플루오르화붕소(BF₃)** : 천연플루오르화칼슘과 분말 산화붕소를 황산 존재 하에 열처리하여 얻는다. 무색의 가스이다. 습기 있는 공기 중에서는 발연하며 유기물을 탄화(carbonise)한다. 물을 고도로 흡수하여 플루오르화붕산을 생성한다. 탈수제(dehydrating agent)나 유기 합성제에 촉매로 사용한다. 이는 유기화합물[예: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초산이나 페놀]과 복합화합물을 생성한다 ;이들 화합물들이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2942호**에 분류한다.

(2) 브롬화물(bromide)

(a) **브롬화요드**(IBr)[**모노브로마이드(monobromide)**] : 구성원소를 결합하여 얻는다. 흑적색 결정성의 덩어리로 요드와 비슷하고 물에 녹는다.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b) **브롬화인(phosphorus bromide)**

브롬화인(PBr₃)은 이황화탄소에 용해한 인에 브롬을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 액체로 습기 있는 공기 중에서 발연하고 물에 분해된다. 비중은 약 2.8이며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브롬화포스포늄(PH₄Br)(**제2853호**)과 브롬화탄소(**제2903호**)는 제외한다.

(3) 요드화물(iodide)

(a) **요드화인(phosphorus iodide)**

이요드화인(P₂I₄) : 이황화탄소에 용해한 인에 요드를 반응시켜 얻는다. 오렌지색의 결정이며 유색증기를 발생한다.

삼요드화인(PI₃) : 이요드화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얻으며; 흑적색의 타블렛 모양의 결정이다. 요드화포스포늄(PH₄I)은 **제2853호**에 분류한다.

(b) **요드화비소(arsenic iodide)**

삼요드화비소(AsI₃) : 적색 결정이고 구성 원소를 결합하여 얻는다. 독성과 휘발성이 있다. 의약과 실험실에서 시약(reagent)으로 사용한다.

(c) **그 밖의 할로겐과 요드의 결합물** : A(1)·C(1)(a)·C(2)(a) 참조

(4) 산화염화물을 제외한 할로겐화 산화물

(a) **산화플루오르화물**(예: 산화삼플루오르화인)[플루오르화포스포릴(phosphoryl fluoride)](POF₃)

(b) 산화브롬화물[예: 산화이브롬화황[브롬화티오닐(thionyl bromide)](SOBr_2)(오렌지색 액체), 산화브롬화인[(브롬화포스포릴(phosphoryl bromide)](POBr_3)(얇은 판 모양의 결정)]

(c) 산화요드화물(iodide oxide)

28.13 -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10 - 이황화탄소

2813.90 - 기타

이들 이원화합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이황화탄소(CS_2)

타고 있는 탄소 위에 황 증기를 반응시켜 얻는다. 무색인 독성 액체(비중 약 1.3)이다. 물에 혼합되지 않는다. 불순한 경우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 휘발성과 인화성이 크며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위험하다. 짙이나 벉들가지로 상자를 씌운 돌제품으로 만든 용기·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유리로 만든 용기에 완전히 밀폐하여 보존한다.

이황화탄소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용제(solvent)로 사용한다. 예: 기름·지방·정유의 추출·골(骨)의 탈지(脫脂)·의약·인조섬유나 고무공업에 사용한다. 또한 곤충·필록세라(phylloxera) 등을 파괴하기 위하여 토양에 주입시켜 농업용으로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로는 티오탄산칼륨(제2842호)을 유도한 물질이 때때로 사용한다(제3808호 해설 참조).

(2) 황화규소(SiS_2)

강하게 가열한 규소에 황 증기를 반응시켜 얻는다. 백색 고체이며; 휘발성의 바늘 모양 결정이다. 물에 분해하여 젤라틴 모양의 실리카(silica)를 생성한다.

(3) 황화비소(arsenic sulphide)

이 호는 인조 황화물을 포함한다. 이 인조 황화물은 천연 황화물이나 비소나 삼산화이비소를 황이나 황화수소로 처리하여 얻어진다.

(a) **이황화비소**(As_2S_2 이나 As_4S_4)[인조 계관석·모조 계관석·황화적(red sulphide)] : 독성이 있으며 유리 모양의 적색이나 오렌지색 결정으로 비중은 약 3.5이며; 녹지 않고 기화한다. 불꽃(질산칼륨과 황을 혼합)의 제조·도료[paint(ruby arsenic)]와 가죽의 탈모에 사용한다.

(b) **삼황화비소**(As_2S_3) : 독성인 황색 분말로 비중은 약 2.7이며 ; 무취이고 물에 녹지 않는다. 용도는 이황화비소와 유사하고 또한 가죽과 고무용 안료(顔料 : pigment)·구충제나 의약품용(병의 성장을 저해하므로)으로 사용한다. 황화알칼리와 반응하여 티오아비산염을 형성하는데 이는 제2842호에 해당한다.

(c) **오황화비소**(As_2S_5) : 천연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옅은 황색인 무정형의 고체로 물에 녹지 않는다. 안료(顔料 : pigment)로 사용한다. 황화알칼리와 반응하여 티오비산염을 형성하는데 이는 제2842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천연 황화비소[이황화물(disulphide)이나 계관석(realgar)·삼황화물(trisulphide)이나 옹황(雄黃 : orpiment)]를 제외한다(제2530호).

(4) 황화인(phosphorus sulphide)

- (a) **삼황화사인**(P_4S_3) : 구성원소를 결합하여 얻는다. 회색이나 황색 고체이다. 비중은 약 2.1이다. 무정형 덩어리나 결정으로 생성된다. 마늘 냄새가 있고 맹독성은 없으나 가루라도 흡입하면 위험하다. 끓는 물에 분해되며 공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황화인 중에서 가장 안정하다. 오황화물의 제조·안전성양 제조에서 인의 대용품으로 사용하며;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b) **오황화인**(P_2S_5 이나 P_4S_{10}) : 황색결정으로서 생성되며 ; 비중은 2.03부터 2.09까지이다. 삼황화사인과 동일하며 광물의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 (c) **상거래 관습상의 삼황화인** : 삼황화인으로 알려진 이 물품은 대량 P_2S_3 의 구조를 가진 혼합물이며 ; 황회색 결정의 덩어리로 생성되며 물에 분해된다.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황과 할로젠원소의 이원결합물(예: 염화황)(제2812호)
- (b) 산화황화물(예: 비소·탄소와 규소의 산화황화물)과 비(非)금속의 티오할로젠화물(예: 클로로황화인과 염화티오카르보닐)(제2853호)

제4절

무기염기,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제2814호 - 제2825호)

총설

염기(base)는 수산기(OH)의 특징을 가진 화합물이며 산(acid)과 반응하여 금속염을 형성한다. 액체나 수용액(水溶液)상태에서는 음극에서 금속이나 유사한 기(ion)[암모늄(NH₄⁺)]를 주는 전해질이다.

금속 산화물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이며 1 이상의 물분자와 결합하여 수산화물을 생성한다.

대부분의 산화물은 이의 수산화물이 **염기**로서 작용하므로 염기성이다. 그러나 특정의 산화물(무수산화물)은 알칼리나 그 밖의 염기와 같이 반응하여 염을 생성하며 한편 그 밖의 다른 보통 부류(양성산화물)는 무수산화물이나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산화물의 종류는 이의 실질적으로나 가상적으로 수산화물과 일치하는 산(acid)의 **무수산화물**로 간주하여야 한다.

특정 산화물[**염산화물(saline oxide)**]은 무수산화물과 염기성 산화물을 결합하여 생성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절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 과산화물(염기성 산화물·산성 산화물·양성 산화물·염 산화물)을 포함한다.
- (2) 그 밖의 산소를 포함하지 않은 무기염기[예: 암모니아(제2814호)나 히드라진(제2825호)]와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무기염기[예: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제2825호)]

이 절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25류**의 산화물과 수산화물 특히 마그네시아(magnesia)(산화마그네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생석회(生石灰: quicklime)와 소석회(消石灰: slaked lime)[조(crude)산화칼슘과 수산화물]
- (b) 금속광(**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을 구성하고 있는 산화물과 수산화물·철링(scaling)·회(灰)·슬래그·드로스·부유물이나 그 밖의 금속을 함유하는 잔유물(**제2618호**부터 **제2620호**)
- (c) 귀금속의 산화물·과산화물·수산화물(**제2843호**)·방사성원소의 산화물·과산화물·수산화물(**제2844호**)·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 혼합물의 산화물·과산화물·수산화물(**제2846호**)·수은 산화물·과산화물과 수산화물(**제2852호**)
- (d) 수소의 산소 화합물(**제2201호**(물)·**제2845호**(중수(重水: heavy water))·**제2847호**(과산화수소)나 **제2853호**(중류수·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수·이온교환체로 처리한 물을 포함한다)]
- (e) 금속 산화물을 기본 재료로 한 착색제(colouring matter)(**제3206호**)·조제 안료(顏料: pigment)·조제 유백제·조제착색제·유리질의 에나멜과 유약 그 밖의 도자기 공업·에나멜이나 유리 공업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3207호**)과 다른 물품과 혼합한 산화물·수산화물이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제32류**의 그 밖의 조제품
- (f) 인조 섬유용 소광(消光: de-lusting)제로 사용하는 조제 유백제(opacifying preparation)(**제3809호**)와 금속 표면의 산(酸)세척용 조제품(**제3810호**)
- (g) 천연이나 합성의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부터 **제7105호**까지)

28.14 -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 - 무수(無水)암모니아

2814.20 - 암모니아수

암모니아는 석탄가스를 정제할 때나 코크스 처리할 때 생기는 불순한 암모니아 가스액으로부터 (제3825호 해설 (A)(3) 참조) 얻거나 수소와 질소로부터 합성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무수(無水)암모니아(NH₃) : 무색 가스이다. 공기보다 가벼우며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한다. 금속 실린더에 넣어 제시한다.

(2) 암모니아수(NH₄OH) : 암모늄기(NH₄)의 수산화물이다. 이 수용액(水溶液)(일반적으로 20% · 27% · 34%의 NH₃를 함유한다)은 무색이나 황색 액체로 꼭 끼게 밀봉한(tightly-stopped) 용기에 넣어 제시한다. 암모니아의 알콜성 용액은 **제외한다(제3824호)**.

암모니아의 용도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질산과 질산염 · 황산암모늄 · 그 밖의 암모늄염과 질소계비료 · 탄산나트륨 · 시안화물 · 아민화물[예: 나프틸아민(naphthylamine)]의 제조에 사용한다. 암모니아는 지방질과 수지를 유화(乳化 : emulsify)시키고 오물의 제거 · 광택제의 조제 · 라텍스의 처리 · 바니시 제거 등에 사용한다. 액화암모니아는 냉동시설에 사용한다.

28.15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 고체

2815.12 -- 수용액(水溶液)(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2815.2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2815.3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A)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 : caustic)소다]

수산화나트륨[NaOH : 가성(苛性)소다]은 상거래 관습상 소다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상거래 관습상 소다는 탄산나트륨이다(제2836호).

수산화나트륨은 예를 들면, 탄산나트륨에 석회유(milk of lime)를 가성화(causticising)하거나 염화나트륨을 전해하여 얻는다. 이는 수용액(水溶液)이나 무수 고체 상태로 제시하고 수용액(水溶液)을 증발시키면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의 고체수산화나트륨이 된다. 수산화나트륨의 순품(pure product)은 펠렛(pellet) 모양이나 육면체 모양으로 유리용기에 제시한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피부와 점막을 침식한다. 조해성(潮解性)이 있으며 물에 잘 녹고 ; 잘 봉합한 철제 용기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여러 공업에 사용하는 강력한 염기이다. 리그닌(lignin)을 제거하여 특정 화학목재펄프 제조·재생섬유의 제조·면(cotton)의 광택 가공·탄탈륨과 니오븀의 야금(冶金)·경(hard)비누의 제조·여러 화학제품의 제조·석탄 산화물질의 제조[석탄산·레조르시놀(resorcinol)·알리자린(alizarin)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알칼리나 황산염 공정으로 목재펄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로 얻는 소다 폐액(제3804호)은 제외하며 ; 이 소다 폐액에서 제3803호의 톨유(tall oil)와 재생 수산화나트륨을 얻을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소다 석회(soda lime)”로 칭하는 석회와 수산화나트륨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3824호).

(B)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수산화칼륨[KOH·가성(苛性)칼륨]은 위에서 설명한 수산화나트륨과는 매우 유사하다. 탄산칼륨(제2836호)이나 상거래 관습상 칼리(potash)(특정 국가에서 칼륨의 염·특히 염화칼륨을 칭하는 부정확한 명칭)와 구별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 천연 염화칼륨(제3104호)의 수용액(水溶液)을 전해하거나 탄산칼륨을 석회유(milk of lime)로 가성화하여 얻는다. 순수한 수산화칼륨은 알코올과 처리하여 수산화바륨과 황산칼륨을 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 얻는다.

수산화칼륨은 수용액(水溶液)(potash lye)·다소 고도로 농축한 것(보통 약 50%)이나 산화칼륨을 함유하는 고체(불순물이 혼합)로 제시하는 수도 있다. 이는 수산화나트륨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되고 유사한 성질이 있다.

용도는 연질(soft) 비누의 제조·도금(metallised)이나 재도장(repaint)한 부분의 산(酸)세척(pickling)·표백(bleaching)·과망간산칼륨의 제조 등이다. 또한 뜸질제(cauterising agent)(봉 모양)로 의약품용에 사용하는데 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석회(lime)와 혼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제3003호**나 **제3004호**에 분류한다.

(C)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나트륨(Na_2O_2)은 나트륨을 연소시켜 얻으며 조해성(潮解性)이 강한 백색이나 황색 분말로 비중은 약 2.8이다. 물에 분해하여 열을 발생하고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또한 케이크 형태로 밀폐한 금속용기에 제시한다.

비누 제조·섬유 표백에 사용하며 유기 합성에서 산화제나 공기정화제(예: 잠수함에서 사용)에 사용한다. 과산화수소를 급히 제조하기 위하여 과산화나트륨에 촉매(구리의 흔적이나 니켈염 등)를 혼합한 경우는 조제품이므로 **제3824호**에 해당한다.

(D) 과산화칼륨

과산화칼륨(potassium peroxide : dipotassium dioxide)(K_2O_2)은 제조과정·성질과 용도에 대해 과산화나트륨과 매우 유사하다.

28.16 - 수산화마그네슘 ·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 · 과산화물

2816.1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2816.4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A) 수산화마그네슘 · 과산화마그네슘

- (1) **수산화마그네슘**($Mg(OH)_2$) : 백색의 분말로 산화마그네슘보다 무겁다 ; 안정하지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서서히 탄산염이 생성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한다.
- (2) **과산화마그네슘**(MgO_2) : 수산화마그네슘에 과산화수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백색 분말이고 불순물로서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운모 표백 · 치약제조 · 위장의 방부제에 사용한다.

산화마그네슘은 **제외한다(제2519호나 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배양한 결정 모양인 경우는 제3824호)**.

(B) 산화스트론튬 · 수산화스트론튬 · 산화스트론튬

- (1) **산화스트론튬**(anhydrous or caustic strontia)(SrO) : 침전 탄산스트론튬을 하소(煨燒 : calcined)하여 제조되며 다공성(多孔性) 백색 분말로 흡습성이 있고 물에 녹으며 공기 중에 노출하면 탄산염이 된다. 용도는 불꽃 · 의약 · 수산화스트론튬과 안료 제조이다.
- (2) **수산화스트론튬**($Sr(OH)_2$) : 무수(無水) 무정형 상태거나 $8H_2O$ 의 결정수를 가진 결정으로 존재하며 ; 공기 중에 노출하면 탄산염이 된다. 유리 제조 · 스트론튬염의 제조와 형광안료(顔料)에 사용한다.
- (3) **과산화스트론튬**(SrO_2) : 산화스트론튬에 산소를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분말로 뜨거운 물에 분해되고 불꽃에 사용한다.

(C) 산화바륨 · 수산화바륨 · 과산화바륨

- (1) **산화바륨**(barium oxide : anhydrous baryta)(BaO) : 중정석(重晶石 : barytes)으로 알려진 천연 황산바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산화바륨은 침강 질산바륨이나 침강 탄산바륨을 하소(煨燒)하거나 규산바륨을 전해하여 얻는다. 산화바륨은 산화스트론튬과 외관이 유사하나 더 무겁고(비중 약 5.5) 결정화할 수 있다. 수산화바륨 · 과산화바륨과 금속바륨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 독중석(毒重石 : witherite)을 단순히 하소(煨燒)하여 얻은 조(crude)물품은 **제외한다(제2511호)**.

- (2) **수산화바륨**($Ba(OH)_2$) : 보통 백색으로서 풍화성이 있는 얇은 판 모양의 결정($8H_2O$ 가진 것)이나 수용액(水溶液)[baryta수(水)] 상태로 제시한다. 유리공업 ; X선 방어용 유리 제조 ; 도자기제품 ; 물의 정제 ; 수산화칼륨과 여러 바륨 화합물 제조에 사용한다.
- (3) **과산화바륨**(BaO_2) : 이산화탄소가 없는 공기 중에서 산화바륨을 열처리하여 제조된다. 백색 분말이나 불용성 회색 덩어리(비중 약 5)이다. 물에 분해하여 과산화수소가 생성되고 ; 과산화수소 제조에 사용한다.

28.17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A) 산화아연

산화아연[아연백(白 : zinc white)](ZnO)은 공기 속에서 아연 증기를 산소로 연소하여 얻는다. ; 아연 증기는 금속 아연을 증기화[간접식공정이나 프렌치 공정(French process)]하거나 아연광 [배소(焙燒 : roasted)한 섬아연광·이극광 - 제2608호]과 같은 아연산화물 원재료를 탄소로 환원[직접식 공정이나 아메리칸 공정(American process)]하여 얻는다. 이 공정들을 통하여 산화물이 집진기나 챔버(chamber) 내에 모아져서 점차적으로 순수한 산화물의 침전물을 형성하게 된다.

습식 공정에서는, 아연이 아연을 함유하는 원재료로부터 걸러지고 그 후에 수산화아연이나 탄산아연으로 침전된다. 그 침전물이 여과·세척·건조·하소(煨燒 : calcinated)의 과정을 거쳐 산화아연으로 된다. 산화아연은 미세한 백색의 가루인데 가열하면 노란색으로 변화한다. 산화아연은 양쪽성(amphoteric)을 지니며, 산과 알칼리에 용해된다.

산화아연은 주로 공업용 페인트에 사용한다. 산화아연은 또한 고무산업, 도자, 유리 제조, 전자공업과 의약품에 사용한다. 산화아연은 또한 플라스틱의 제조에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염이나 유기염의 선구물질(precursor)이다.

제2841호의 아연산염은 이러한 양쪽성 산화물에 해당한다.

(B) 과산화아연

과산화아연(ZnO_2) : 백색 분말로 물에 녹지 않으며, 의약품용으로 사용한다(순수하거나 불순물로 산화아연을 함유한 것). 또한 화장품 제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천연 산화아연이나 홍아연광(제2608호)
- (b) 아연야금의 잔유물[아연의 비듬 같은 편(scurf)·찌꺼기(skimmings)·부스러기(dross)으로 알려진 것] (이는 불순한 산화물로 조성한다)(제2620호)
- (c) 수산화아연[$Zn(OH)_2$]이나 젤라틴 백(白)이나 히드로과산화물(제2825호)
- (d) 불순한 산화아연(때로는 징크 그레이(zinc grey)로 알려진 것)(제3206호)

28.18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18.2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2818.30 - 수산화알루미늄

(A) 인조 커런덤(artificial 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조 커런덤(artificial corundum)은 산화알루미늄을 전기로에서 용융(溶融 : fused)하여 형성된다. 산화알루미늄은 천연의 개시(開始)재료[보크사이트(bauxite)] 자체에 함유되었거나 혹은 예를 들면, 용융(溶融)입자의 경도를 증가시키거나 색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첨가된 다른 산화물(예: 산화티타늄·산화크로뮴)을 적은 비율로 함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조 커런덤과 그 밖의 물질의 기계적 혼합물(예: 이산화 지르콘)은 **제외한다(제3824호)**.

인조 커런덤은 작은 조각이나 덩어리(잘게 부순 것이나 낱알 모양으로 한 것)로 한 것이며 ; 공기와 산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보통의 산화알루미늄보다 저항력이 크며, 대단히 단단하다. 이것의 용도는 연마제, 내화물의 집성체[멀라이트(mullite)와 규선석(珪線石 : sillimanite)·커런덤(corundum)과 순수한 내화(耐火)점토와 무수(無水)·규산알루미늄의 각각의 혼합물]의 제조·실험실 기구의 제조·전기 공업용 등이다.

(B)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은 제외한다]

산화알루미늄[무수(無水) 알루미늄이나 하소(煨燒) 알루미늄](Al_2O_3)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산화알루미늄이나 암모늄 명반으로 소성(燒成)하여 얻는다. 가벼운 백색 분말로서 물에 녹지 않으며 비중은 약 3.7이다.

용도는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 야금(冶金)·페인트의 충전제·연마제나 합성 귀석이나 반귀석[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아메티스트(amethyst)·아쿠아마린(aquamarine) 등]의 제조·탈수제(가스건조용)와 촉매[아세톤과 초산의 제조·크래킹(cracking) 조정 등]이다.

(C)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Al_2O_3 \cdot 3H_2O$)은 알루미늄 야금(冶金) 할 때 보크사이트(bauxite)(수산화알루미늄을 함유하는 혼합물)에서 얻는다(해설서 제76류 총설 참조).

건조한 수산화물은 무정형의 잘 부서지는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습한 경우에는 젤라틴 상태의 덩어리로 된다(알루미나 겔, 젤라틴 알루미나).

수산화알루미늄은 도자기 광택제·프린트 잉크·의약품·명반·위에서 설명한 인조 커런덤·액체의 청량제 제조에 사용하며 ; 탄소와 혼합하여 방청페인트 제조·유기착색제의 친화력을 주므로 제3205호의 레이크안료(顔料)의 제조와 직물 매염제에 사용한다.

제2841호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산염은 양성 수산화물에 상당하다.

이 호에는 또한 활성 알루미늄(activated alumina)를 분류하는데 이는 잘 조절된 열로 함수알루미늄(hydrated alumina)를 처리하여 얻으며[이 공정에서 함수알루미늄은 구성 수분의 대부분을 잃는다] 주로 흡착제나 촉매로 사용한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천연 커런덤(천연 산화알루미늄)과 금강사(金剛砂 : emery)(산화철을 함유한 산화알루미늄)(**제2513호**)
- (b) 보크사이트(bauxite) : 세척한 것인지와 하소(煨燒 : calcined)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전해용으로 사용하는 화학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예: 소다로 처리한 것)(**제2606호**)
- (c) 활성 보크사이트(activated bauxite)(**제3802호**)
- (d) 수산화알루미늄의 콜로이드 상태의 수용액(水溶液)[가용성 알루미늄(soluble alumina)](**제3824호**)
- (e) 인조 커런덤으로 종이·판지나 그 밖의 물품에 부착한 것(**제6805호**)이나 **제6804호**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숫돌(whetstone)·흔(hone)으로 응결한 것이나 그 밖의 물품
- (f) 산화알루미늄을 기본 재료로 한 천연 귀석이나 반귀석(**제7103호**나 **제7105호**)
- (g) 산화알루미늄을 기본 재료로 한 합성 귀석이나 반귀석(예: 인조 루비)(**제7104호**나 **제7105호**)

28.19 -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 삼산화크로뮴

2819.90 - 기타

(A) 산화크로뮴(chromium oxide)

(1) **삼산화크로뮴(chromium (VI) oxide)**이나 무수크로뮴산(CrO_3)(제2841호에 분류하는 크로뮴산염을 만들 수 있으므로 “크로뮴산”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오렌지색이나 적색의 슬래브(slab) 모양이나 바늘 모양의 결정으로서 ; 조해성(潮解性)이 있고 ; 물에 잘 녹으며 ; 비중은 약 2.8이다. 알코올과 결합하면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한다. 유기화학[이사틴(isatin) 염료·인디고(indigo) 염료 등의 제조]의 산화제는 또한 ; 의약품용에 사용하며 키질구어(kieselguhr)[“규조토(epurite)”]와 혼합한 경우에는 아세틸렌 정제용으로 사용한다.

(2) **삼산화이크로뮴(chromium trioxide)**[chromium (III) oxide(chromium sesquioxide)](Cr_2O_3) : 크로뮴산염에 암모늄염을 가하여 하소(煨燒 : calcined)하거나 중크로뮴산염을 환원하여 얻는다. 녹색의 가루나 결정으로서 단단하고 ; 물에 녹지 않으며 ; 비중은 약 5이다. “크로뮴옥사이드 그린(chromium oxide green)”으로 칭하는 순수한 산화크로뮴은 안료(顔料 : pigment)로 사용하나 “크롬 그린(chrome green)”으로 칭하는 크로뮴산염과 철청(iron blue)과의 혼합물과 혼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는 페인트와 프린트 잉크의 제조·자기·유리(채색된 광학 유리)나 고무 공업에 사용한다. 단단하며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연마제의 제조와 금속로용 내화(耐火 : refractory) 벽돌에 사용한다. 또한 이것은 방청물과 크로뮴야금에 사용한다.

크로뮴철광, 즉,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산화크로뮴(chrome iron ore · iron chromite)은 **제외한다(제2610호)**.

(B) 수산화크로뮴(chromium hydroxide)

“수산화크로뮴(chromium hydroxide)”은 위에서 설명한 산화물의 여러 수산화물에 적용되며 특히 산화크로뮴($\text{Cr}_2\text{O}_3 \cdot 2\text{H}_2\text{O}$)의 녹색의 수화물은 붕산에 중크로뮴산 칼륨을 처리하여 얻으며 ; “크롬 그린(chrome green)”으로 칭하며 착색제나 규이그넷트그린(Guignet's green)의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자색의 수산화크로뮴이 있다.

28.20 - 산화망간

2820.10 - 이산화망간

2820.90 - 기타

- (1) **이산화망간**(MnO_2) : 가장 중요한 산화망간이다. 이는 망간염(예: 황산망간)에 과망간산칼륨의 질산성 용액을 반응시켜 얻으며 갈색이나 흑색의 덩어리나 가루로 비중은 약 5이며 물에 녹지 않는다.

대단히 강력한 산화제로 불꽃·유기 합성[히드록시안트라퀴논(hydroxyanthraquinone)·아미노안트라퀴논(aminoanthraquinone) 등의 제조]·가스마스크·건전지의 감극제(depolarising agent)·요업·건조제의 제조·프린트 잉크(망간블랙)·안료(顔料 : pigment) [광물성 비스타(mineral bistre)로 알려진 갈색 안료·망간비튜먼]·특정 매스틱(mastic)과 합성 반귀석(인조 가넷)과 또한 보통 유리의 황색 반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유리공업에도 사용한다.

이 산화물은 제2841호의 아망간산염으로부터 유도된 무수물(無水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무수(anhydrous) 천연 이산화망간(연망간광)과 수화(hydrated) 천연 이산화망간(경망간광 : psilomelane)은 **제외한다(제2602호)**.

- (2) **일산화망간**(MnO) : 회색이나 녹색의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비중은 약 5.1이다. 식물 프린팅에 사용한다.

수산화제일망간은 **제외한다(제2825호)**.

- (3) **삼산화망간**(Mn_2O_3) : 이 산화물은 염기성으로 갈색이나 흑색 가루로 비중은 약 4.8이며 물에 녹지 않는다. 식물 프린트·요업 색소·유리공업·건조제의 제조(리놀레산 망간)· 무기 화학 공업(질산의 제조)의 촉매·유기화학공업의 촉매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삼산화이망간(갈망간 광-**제2602호**)과 수산화제이망간(**제2825호**)은 **제외한다**.

- (4) **사산화삼망간**(망간살린산화물)(Mn_3O_4) : 어떤 점에서는 염분이 있는 산화철(saline iron oxide)과 유사하다.

천연의 망간 살린옥사이드(하우스만 광)는 **제외한다(제2602호)**.

- (5) **칠산화이망간**(Mn_2O_7) : 암갈색 액체로서 흡습성이 있고 섭씨 40도 근처에서 폭발한다.

이 무수물(無水物)은 제2841호의 과망간산염을 생성한다.

과망간산은 **제외한다(제2825호)**.

28.21 -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₂O₃)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 산화철과 수산화철

2821.20 - 어스컬러(earth colour)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이 **전 중량의 70% 이상** 함유한 **천연** 산화철을 기본 재료로 한 어스컬러(earth colour)는 이 호에 해당한다. 70% 한도에 달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화제이철로서 표시한 전체 철 함유량을 계산해야 하며 ; 따라서 84%의 산화제이철(순철 58.8%로 표시)을 함유하는 이 같은 천연의 철 어스컬러(ferrous earth colour)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인조** 산화물과 수산화물을 포함한다.

(A) 산화철

산화제이철(Fe₂O₃)은 탈수한 황산제일철이나 천연 산화철에서 얻는다. 미세한 가루로 보통 적색이나 때로는 자색·황색이나 흑색(자색·황색·산화블랙)이다. 이는 순수 상태(이 호에 분류하는 경우)나 점토·황산칼슘 등[베네티안 레드(Venetian red)]와 혼합한 경우(**제32류**에 분류)에도 안료(顔料)(iron minium·jewellers' rouge나 colcothar)로 사용한다. 보통의 페인트나 방청 도료·금속 적열이나 연마 유리의 제조·병유리 제조에 있어서 덩어리의 용융(溶融)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랑에 사용한다. 또한 작열제(알루미늄분말과 혼합)의 제조와 석탄가스를 정제 할 때 사용한다.

(B) 수산화철

(1) 수산화제일철(Fe(OH)₂) : 제일철염에 알칼리기를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고체로서, 산소 존재 하에서는 변화하여 수산화제이철로 된다.

(2) 수산화제이철(갈색 산화막)(Fe(OH)₃) : 제이철염에 알칼리를 반응시켜 얻으며 녹색·적갈색이나 자색의 물품으로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 단독인 경우이나 탄소·프루시안브라운 등(saffron이나 Mars yellow)과 혼합(**제3206호**에 해당)하여 안료(顔料)로 사용한다. 수산화제이철은 복합 안료(Van Dyck brown·Van Dyck red·“English brown”·“Swedish brown”)의 제조에 사용한다. 순수 상태에서는 비소 중독의 해독제로 사용한다.

양성 수산화물(amphoteric hydroxide)은 산화 후에 제2841호의 철산염을 생성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70% 미만인 철 어스컬러(ferrous earth colour)·그 밖의 어스컬러의 혼합물 운모상(雲母狀) 산화철(**제2530호**)
- (b) **제2601호**의 철광류[예: 적철광(반사 철광과 천연 산화물을 포함한다)·갈철광(미네트(minette) : 철과 탄산칼슘을 함유하는 수화 산화물)·갈철광(리모나이트(limonite) : 수화산화물)·자철광(마그네타이트(magnetite) : 자성산화물)]

제6부
28.21

- (c) 철린(鐵鱗 : iron scaling) : 적열(red heat)이나 망치로 쳐서 생긴 철의 표면으로부터 분리하여 얻은 조 (crude)산화물(제2619호)
- (d) 가스 정제용의 알칼리산화철(제3825호)
- (e) 반귀석 형태의 산화철(적철광)(제7103호나 제7105호)

28.22 -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A) 산화코발트

- (1) **산화제일코발트**(cobalt monoxide, cobaltous oxide, grey oxide)(CoO) : 회색 가루 · 갈색 가루나 녹색 가루
- (2) **산화제이코발트**(cobalt sesquioxide, cobaltic oxide)(Co₂O₃) : 흑색 가루
- (3) **사산화삼코발트**(cobalt saline oxide)(Co₃O₄) : 흑색 가루
- (4) **상거래 관습상의 산화코발트** : 보통 회색이나 흑색 가루로서 산화제일코발트와 사산화삼코발트가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것

이들 물품들은 요업용의 청(靑)착색제(상감청자 착색제)의 제조와 유리공업에서 광학 유리의 착색제의 제조에 사용하며 ; 이들 물품은 규산염(예: 규산코발트칼륨)으로 전환하여 제3207호에 해당되는 법랑 착색제의 제조에 사용하며 ; 이들 화합물은 규산코발트 안료[화려한 감청(smalt)] · 불투명유리(opaque glass) · 아주아(azure)안료 · 에나멜블루와 세브레(Sèvres)블루로 칭한다. “화려한 감청(smalt)”이란 제2605호에 분류하는 천연의 비화(砒化 : arsenide)코발트 · 스몰트광(휘코발트광 : smaltite) · 광(ore)에서 얻은 산화물과 그들의 규산염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화가용 페인트의 청색 · 녹색 · 자색의 여러 종의 물품은 산화코발트 · 알루미늄산염 · 아연산염과 인산염으로 조성된다[스카이블루 · 세루린(cerulean)블루 · 코발트그린 · 코발트 바이올렛].

이 호에는 함은광(argentiferous ore)을 처리하여 얻은 조(crude)산화코발트는 **제외한다(제2620호)**.

(B) 수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cobalt hydroxide)”는 건조제의 제조에 사용하는 제일수산화코발트(Co(OH)₂) · 코발트 야금(冶金)공업에서 얻는 제이수산화 코발트(예: Co(OH)₃) · 사산화삼코발트의 수화물을 포함한다. 이들은 산화코발트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한다.

천연의 코발트 함수산화물(heterogenite)은 **제외한다(제2605호)**.

28.23 - 산화티타늄

상거래 관습상 산화티타늄은 이산화티타늄이나 무수티탄산(TiO_2)이며 여기서 제2841호의 티탄산염을 얻는다.

이는 무정형의 가루로서 비중은 약 4이고 ; 백색이며 가열하면 황색으로 변한다.

이 호에는 혼합이나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을 분류한다. 그러나 안료(顔料)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제3206호)이나 다른 목적으로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은 **제외한다**(예: 제3815호 · 제3824호).

이 호에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천연 이산화티타늄[금홍석(rutile) · 연추석(anatase) · 판티탄석(brookite)]의 광석(ore)(제2614호)
- (b) 오르토티탄산($\text{Ti}(\text{OH})_4$) · 메타티탄산($\text{TiO}(\text{OH})_2$)(제2825호)

28.24 - 산화납 · 연단(鉛丹) · 오렌지납

2824.1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 · 메시코트(massicot)]

2824.90 - 기타

- (1)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 · 메시코트(massicot)](PbO) : 납이나 백연광(cerussite)(중탄산납)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산화되어 처음에는 옅은 황색 가루인 비용용 일산화납이나 메시코트(massicot)가 생성되며 이를 다시 혈적열점(blood-red heat point)으로 온도를 올리면 등황색이나 적색 가루나 비늘 모양이 된다. “리사지(litharge)”란 앞에서 말한 것을 모두 의미하나 후자의 경우 특히 적용된다. 이들은 또한 은을 함유한 납광에서 은을 추출하는 경우 부산물로 얻는다. 일산화납은 유리공업(납유리 제조와 크리스탈 유리제조) · 에나멜공업 · 성냥 제조 · 착색제 제조 · 건조제 제조 등에 사용한다.
- (2) **사산화삼납**(lead saline oxide, red lead, minium)(대략적인 화학식 : Pb_3O_4) : 용융하지 않은 일산화납[메시코트(massicot)]에서 얻으며 독성이 있고 등적색 가루로 비중은 8에서 9이다. **오렌지납**은 색이 진하며 비중이 적은 순수한 염산화물(saline oxide)이거나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백연광에서 추출한 탄산납을 함유하는 산화물이다. **연단(鉛丹 : red lead)**은 그 밖의 착색료(Saturn red)를 불리는데 사용하는데 방청페인트 · 매스틱(mastic)과 착색할 때, 실링왁스제조에 사용하며 도자기에도 사용한다. 결정 유리 · 광학 유리의 제조에 사용하는데 이는 높은 굴절률에서 생기는 뚜렷한 휘황한 용융(溶融 : fused)유리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 (3) **이산화납**(pure oxide, plumbic anhydride)(PbO_2) : 사산화삼납과 질산을 작용시키거나 질산납을 전해하여 얻으며 갈색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유기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불꽃(pyrotechnics)의 산화제 ; 성냥 제조 · 축전지의 극판 · 직물 공업의 매염제(mordant)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양쪽성(amphoteric) 산화물은 제2841호의 연산염(plumbate)을 생성한다.

28.25 -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 금속과산화물

- 2825.10 -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 2825.2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 2825.3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 2825.4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 2825.5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 2825.6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 2825.7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 2825.80 - 산화안티모니
- 282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B) 전기 호들에서 제외한 이 류의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 금속과산화물

이 호에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히드라진과 그 무기염

히드라진(NH_2NH_2) : 암모니아를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화시켜 제조한 염기성물질로서 수화물($\text{NH}_2\text{NH}_2 \cdot \text{H}_2\text{O}$)로 존재한다. 무색의 최루성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연하며 강력한 환원제로서 화약 제조나 화학 합성에 사용한다.

히드라진의 무기염 : 히드라진에 광산(鑛酸 : mineral acid)을 반응시켜 얻으며 이 호에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산히드라진**이며 무색 결정으로 냉수에 약간 녹고 가열하면 격렬하게 분해되며 ; 이 황산히드라진은 분석시약 · 야금(冶金)[텔루륨(tellurium)에서 폴로늄(polonium)을 분리]에 사용한다.

히드라진의 유기유도체는 **제외한다(제2928호)**.

(2) 히드록실아민과 그 무기염 :

히드록실아민(NH_2OH)은 니트로메탄을 가수분해하여 얻는 염기성으로 ; 무색의 조해성(潮解性) 결정으로 물에 잘 녹는다. 녹는점은 섭씨 33℃이고 130℃에서 격렬히 분해된다.

히드록실아민의 무기염 : 히드록실아민에 광산(鑛酸)을 반응시켜 얻으며, 이 호에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화히드록실아민 · 황산히드록실아민 · 질산히드록실아민**으로 백색이나 무색의 결정이며 물에 녹는다. 유기 합성에서 환원제 · 지방산의 항산화제 · 표백직물의 염색과 프린트 · 시약 등으로 사용한다.

히드록실아민의 유기유도체는 **제외한다(제2928호)**.

(3)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 산화리튬(Li_2O)과 수산화리튬(LiOH)은 질산리튬으로부터 얻어진 백색 분말로 물에 녹고, 사진 제조와 리튬염 제조에 사용한다.

(4) **산화바나듐(vanadium oxides)과 수산화바나듐(vanadium hydroxide)** : 가장 중요한 산화바나듐은 오산화바나듐(V_2O_5)이며, 천연의 바나듐산염·바나디나이트(vanadinite)(제2615호)와 카르노타이트(carnotite)(제2612호)에서 얻는다. 이는 무정형이나 결정·덩어리나 가루이다. 색조는 황색에서 적갈색의 범위이고 ; 열에 노출시키면 적색으로 변하고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바나듐염의 제조·잉크·촉매(황산·무수프탈산이나 합성에탄올의 제조)에 사용한다.

산(acid)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수산화물로부터 제2841호의 여러 가지 바나듐산염이 유도된다.

(5) **산화니켈(nickel oxide)과 수산화니켈(nickel hydroxide)**

(a) **산화제일니켈(NiO)** : 질산염이나 탄산염을 충분히 하소(煨燒)하여 얻은 녹회색 가루로서 밀도와 색조는 제법에 따라 달라진다. 에나멜 공업이나 유리 공업에서 착색제로 사용되고 유기 합성의 촉매로 사용하는 염기성 산화물이다.

(b) **산화제이니켈(sesquioxide)(Ni_2O_3)** : 흑색 가루로서 에나멜 공업에서 착색제로 사용하고 알칼리축전지의 그리드 플레이트(grid plate) 제조에 사용한다.

(c) **수산화니켈($\text{Ni}(\text{OH})_2$)** : 미세한 녹색가루로서 전기도금·알칼리 축전지의 플레이트(plate)의 구성요소·니켈 촉매의 제조에 사용한다.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천연산화니켈[번제나이트(bunsenite)](제2530호)

(b) 불순물이 함유된 산화니켈[예: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알갱이 모양의 산화니켈 “녹(綠)산화니켈(green nickel oxide)”](제7501호)

(6)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a) **일산화구리(적산화구리)(Cu_2O)** : 초산화구리나 황산화구리로부터 얻으며 ; 결정성 적색 가루로서 물에 녹으며 적색유리 착색(신호용 유리)·선저 도료나 합성귀석(인조 에메랄드)의 제조와 농약의 살충제로 사용한다.

(b) **이산화구리(흑산화구리)(CuO)** : 질산화구리·탄산화구리로부터 제조되거나, 금속구리를 산화시켜 얻는다. 흑색 가루나 밥색의 광택이 있는 입자이며 물에 녹지 않는다. 에나멜·유리(green glass)나 요업공업과 페인트 제조에서 안료(顔料)로 사용한다. 또한 전지의 감극제·산화제나 유기화학에서 촉매로 사용한다.

(c) **수산화구리(copper hydroxide)** : 이 수산화물의 가장 보편적인 것은 수산화제이구리($\text{Cu}(\text{OH})_2$)이며 청색 고체로 단일 수산화물이나 혼합 수산화물로 하여 안료(顔料)(브레멘 블루)를 구성한다. 또한 안료(顔料)(예: Peligot blue, permanent in artificial light)와 “시바이저 시약(Schweitzer’s reagent)”이라 칭하는 암모니아용액[레이온(rayon)을 제조할 때 구리아모니아 공정용 용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천연의 제일산화구리[쿠프라이트(cuprite)]와 천연의 제이산화구리[테너라이트(tenorite)]는 **제외한다(제2603호)**.

(7) **산화게르마늄(germanium oxide)** : 산화게르마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화게르마늄(GeO_2)이며 금속야금에서 천연 황산게르마늄동[게르마나이트(germanite)](제2617호)으로부터나 그 염화물을 가수분해하여 얻는다. 이는 백색 가루로 물에 약간 녹는다. 게르마늄금속(트랜지스터용 등)의 제조·의약품용·특수 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8) **산화몰리브데늄과 수산화몰리브데늄** : 가장 중요한 산화몰리브데늄은 삼산화몰리브데늄(MoO_3)이며 천연 황광·몰리브데늄광(제2613호)에서 얻는다. 이는 백색 결정으로 가열하면 황색으로 변하여 ; 사실상 물에 녹지 않는다. 유기 합성(무수프탈산의 제조)의 촉매로 사용한다.

또한 청색 산화물이 있는데 화가들은 청색산화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해당 혼합물은 **제32류**로 분류한다) 사용하며 이는 몰리브데늄블루와 미네랄 인디고라 칭한다.

수산화물은 몰리브데늄산(H_2MoO_4)을 포함하는데 백색이나 황색의 가루로 물에 약간 녹고 요업용 유약과 촉매로 사용한다. 제2841호의 몰리브데늄산염은 이들 수산화물의 유도체이다.

천연 산화몰리브데늄(몰리브데늄광·몰리브다이트)은 **제외한다(제2530호)**.

(9) **산화안티모니(antimony oxide)**

(a) **삼산화안티몬(Sb_2O_3)** : 금속을 산화하거나 천연 황화물(휘안광)에서 얻으며 백색 가루나 바늘 모양 결정으로서 ; 사실상 물에 녹지 않는다. “안티모니백(antimony white)”은 이 호에 해당하는 순수 산화물과 이 호의 산화물과 산화아연의 혼합물에 사용하며 후자는 **제32류**에 분류한다. 삼산화안티몬은 페인트·에나멜공업(철의 에나멜)의 유백제·도기공업(상약)·낮은 팽창율의 유리제조(램프유리)·합성귀석이나 반귀석[합성루비·토파즈(topaze)와 가넷(garnet)]의 제조에 사용한다. 제2841호의 아안티몬산염을 생성한다.

(b) **오산화안티몬(Sb_2O_5)** : 금속의 산화나 질산염을 하소(煨燒)하여 얻으며 황색 가루로 에나멜공업에서 유백제(opacifier)로 사용한다. 제2841호의 안티몬산염을 생성한다.

(c) **사산화안티몬(Sb_2O_4)** : 백색 가루로 오산화물을 열처리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광(ores), 즉, 천연 삼산화안티모니[방안광(senarmonite)과 백안광(valentinite)]과 천연 사산화물[세르반타이트(cervantite)]은 **제외한다(제2617호)**.

(10) 산화베릴륨(beryllium oxide)과 수산화베릴륨(beryllium hydroxide)

- (a) **산화베릴륨(BeO)** : 질산베릴륨이나 황산베릴륨으로부터 얻으며 백색 가루로서 물에 녹지 않으며 ; 결정화시킬 수 있다. 베릴륨염 · 합성귀석이나 반귀석의 제조와 촉매로서 사용한다.
- (b) **수산화베릴륨(Be(OH)₂)** : 백색 가루로 외형이 알루미나(alumina)와 유사하다.

(11) 산화칼슘 · 수산화칼슘과 과산화칼슘 : 이 호에는 특히 점토 · 산화철 · 산화망간 등을 함유 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산화물(CaO)과 수산화물(Ca(OH)₂)을 분류하는데 이는 침강탄산칼슘을 하소(煨燒)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생석회(生石灰 : quicklime)를 전기로에서 용융(溶融 : fusing)하여 얻은 용융(溶融) 석회(lime)를 분류하며 이는 고순도(산화칼슘으로 약 98%) 물품으로 ; 무색의 결정이다. 특히 로(爐)의 내장과 도가니 제조와 내구성을 증진하도록 작은 조각으로 하며 콘크리트 첨가용으로 사용한다.

과산화칼슘(CaO₂)은 백색이나 황색 가루의 수화물(보통 8H₂O)로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살세균제 · 세척제 ·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다.

생석회(生石灰 : quicklime)(산화칼슘)와 소석회(消石灰 : slaked lime)(수산화칼슘)는 **제외한다(제2522호)**.

(12) 수산화망간(manganese hydroxide)

- (a) **수산화제일망간(Mn(OH)₂)** :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 (b) **수산화제이망간(Mn(OH)₃)** : 삼산화이망간(Mn₂O₃)의 유도체이며 갈색 가루로서 착색제(manganese brown)제조와 리놀레산망간 제조에 사용한다.
- (c) **수산화살린망간(manganese saline hydroxide)** : 망간살린산화물(Mn₃O₄)로부터 유도된다.

이 호에서는 **제2602호**의 광(ore)인 천연 함유 산화망간(천연수산화망간)[망가나이트(manganite)]과 비함수 산화망간(**제2820호**)은 **제외한다**.

(13) 이산화지르코늄(지르코니아 · ZrO₂) : 천연의 결정성 규산지르코늄이다. 지르콘(**제2615호**나 **제7103호**)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인조 산화지르코늄은 위에서 설명한 광석이나 지르코늄염에서 얻으며 녹는점이 섭씨 약 2,600도이므로 내화성이 높은 백색 가루이다. 산화지르코늄은 화학제 작용에 내성을 갖는 내화성이 큰 물품 · 안료(顔料) · 요업의 유백제(opacifier)[지르코늄백(zirconium white)] · 연마제 · 유리의 구성 성분과 촉매로 사용한다.

천연의 산화지르코늄이나 바텔라이트(baddeleyite)는 **제2615호**에 해당하는 광이다.

(14) 산화카드뮴(cadmium oxide)과 수산화카드뮴(cadmium hydroxide)

- (a) **산화카드뮴(CdO)** : 탄산염이나 수산화물을 제조할 때 하소(煨燒) 온도에 따라 황갈색 가루가 생긴다. 요업과 촉매로 사용한다.
- (b) **수산화카드뮴(Cd(OH)₂)** : 백색 가루이다.

(15) 산화주석(tin oxide)과 수산화주석(tin hydroxide)

- (a) **산화제일주석(stannous oxide : brown oxide)(SnO)** : 물에 녹지 않고 회색이나 흑색 결정이나 올리브갈색 가루로 청색·적색이나 녹색을 띠며 이는 제조 공정에 따라 다르다. 이 산화물은 양성(amphoteric)이고 제2841호의 아주석산염을 생성하며 환원제나 촉매로서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b) **산화제이주석[stannic oxide(stannic anhydride, dioxide)](SnO₂)** : 물에 녹지 않는 가루로서 백색(tin white)이나 회색(tin ash)이다. 백색 산화물은 유백제(opacifier)로서 요업과 유리 공업에 사용하고 회색 가루는 금속·거울 등의 광택제에 사용하며 또한 범람에 사용한다. 이 산화물은 때때로 “퍼티분(putty powder)”으로 칭하며 이 용어는 이 산화물과 산화납의 혼합물에도 통용되며 이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

산화제이주석은 양쪽성이며 제2841호의 주석산염(stannate)을 생성한다.

- (c) **주석산(stannic acid)이나 수산화주석(stannic hydroxide)(Sn(OH)₄)** : 주석산염에 알칼리금속의 수산화물을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가루로 메타석산으로 변한다.
- (d) **메타주석산(meta-stannic acid)** : 주석산으로부터 얻어진;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요업에서 유백착색제(opacifying colour)와 유리 공업에서 연마제로 사용한다.

이들 주석산(stannic acid)은 제2841호의 주석산염(stannate)을 생성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천연 주석산화물[카시터라이트(cassiterite)]광석(**제2609호**)
- (b) 주석의 드로스(tin dross)·금속용융 중에서 생긴 주석(tin)과 산화주석의 혼합물(**제2620호**)

(16) 산화텅스텐(tungsten oxide)과 수산화텅스텐(tungsten hydroxide) : 가장 중요한 산화텅스텐은 삼산화텅스텐(WO₃)이며 천연의 텅스텐산염·철망간중석이나 회중석(제2611호)을 처리한 금속 텅스텐을 야금(冶金)하여 얻는다. 이는 레몬황색의 결정으로 열처리하면 오렌지색(orange)으로 변하며 물에 녹지 않는다. 전구용 필라멘트용으로 텅스텐 금속 제조와 요업용 페인트에 사용한다.

여러 개의 수산화물이 있는데 텅스텐산(H₂WO₄)(황색수화물)이 포함되며 제2841호의 정상 텅스텐산염을 생성한다.

천연 산화텅스텐은 **제외한다(제2530호)**.

(17) 산화비스무트(bismuth oxide)와 수산화비스무트(bismuth hydroxide)

- (a) 삼산화비스무트(Bi_2O_3)** : 질산비스무트이나 탄산비스무트로부터 제조되며 옅은 황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고 가열하면 적색으로 변한다. 유리와 요업공업에 사용한다.
- (b) 오산화비스무트(Bi_2O_5)** : 적갈색 가루이다.
- (c) 수산화비스무트($\text{Bi}(\text{OH})_3$)**

천연의 산화비스무트는 주로 삼산화물로 구성되며,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617호)**.

이 호에는 산화수은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852호)**.

제5절

무기산과 금속의 염·과산화염

(제2826호 - 제2842호)

총설

금속염은 산(acid)의 수소 원소를 금속이나 암모늄이온(NH_4^+)으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액체나 수용액(水溶液) 상태에서 전해하여 음극에서 금속(또는 금속이온)을 생성한다.

중성염에서는 모든 수소 원자가 금속에 의하여 치환되지만 **산성염**은 금속에 의하여 치환될 수 있는 수소의 일부를 함유하고 있고 ; **염기성염**은 산을 중화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양의 염기성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다(예: $\text{CdSO}_4 \cdot \text{CdO}$).

제5절에는 제2절에 분류하는 산[비(非)금속(non-metal)에서 유도된 산]의 금속염이나 제4절에 분류하는 산의 금속염(금속의 수산화물의 기능을 가진 산)을 분류한다.

겹염(double salt)이나 착염(complex salt)

특정 겹염과 착염은 제2826호부터 제2841호까지 열거하였으며 ; 예를 들면,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붕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제2826호)·명반(제2833호)·시안착염(제2837호)이다. 열거하지 않은 겹염과 착염에 관해서는 제2842호의 해설을 참조 할 것

이 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25류**에 해당하는 염(예: 염화나트륨)
- (b) **제26류**에 해당하는 광을 함유하는 염이나 그 밖의 물품
- (c) 귀금속화합물(**제2843호**)·방사성원소의 화합물(**제2844호**)·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과 이들 금속혼합물의 화합물(**제2846호**)이나 수은 혼합물(**제2852호**)
- (d) 인화물·탄화물·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붕화물(**제2849호, 2850호와 제2853호**) 및 인철(**제15부**)
- (e) **제31류**에 해당하는 염
- (f) 안료(pigment)·착색제·유백제(opacifier)·에나멜과 **제32류**에 분류하는 그 밖의 조제품, 이 절에는 안료로서 직접 사용하는데 적합한 **비혼합**의 금속염[루미노퍼(luminophore)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안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금속염을 혼합했거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한 경우의 염은 **제32류**에 분류한다.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루미노퍼(luminophore)는 **제3206호**에 분류한다.
- (g) **제3808호**에 분류하는 소독제(disinfectant)·살충제(insecticide)·살진균제(fungicide)·제초제(weed killer) 등
- (h) 용접용 용제(融劑 : flux)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제3810호**)
- (ij)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광학소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각 2.5g 이상의 것(**제3824호**) ; 광학소자의 것이면 **제9001호**에 분류한다.
- (k) 천연이나 합성의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부터 **제7105호**)

28.26 -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 플루오르화물

2826.12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2826.19 -- 기타

2826.3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2826.90 - 기타

(A) 플루오르화물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플루오르화물(예: 제2811호의 플루오르화 수소산의 금속염)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 (1) **플루오르화암모늄(ammonium fluoride)** : 중성 플루오르화물(NH_4F)과 산성 플루오르화물($\text{NH}_4\text{F} \cdot \text{HF}$). 이들은 조해성(潮解性)인 무색의 독성 결정물로 물에 녹는다. 방부제(목재나 가죽의 방부제) ; 발효의 조절(플루오르화 수소산의 대응) ; 염색(매염제) ; 유리의 부식(주로 산플루오르화물) ; 구리의 정련 ; 야금(冶金)(광석의 분해 · 백금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 (2) **플루오르화나트륨(sodium fluoride)** : 중성 플루오르화물(NaF)과 산성 플루오르화물($\text{NaF} \cdot \text{HF}$). 이들은 제2529호의 천연의 플루오르화칼슘[플루오르스파(fluorspar)나 플루오라이트(fluorite)]을 나트륨염과 함께 하소(煨燒)하여 얻으며, 무색의 결정체로서 물에 녹지 않으며 독성이 있다. 플루오르화암모늄과 같이 이들은 방부제(가죽 · 목재 · 알의 저장) · 발효의 조절 · 유리의 부식이나 프로스팅(frosting) · 범랑제조 · 구충제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 (3) **플루오르화알루미늄(AlF_3)** : 보크사이트(bauxite)와 플루오르화수소산으로부터 제조되며, 무색의 결정체로서 물에 녹지 않는다. 에나멜이나 요업공업의 용제(融劑 : flux)나 과산화수소의 정제에 사용한다.
- (4) **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fluoride)** : 중성 플루오르화칼륨($\text{KF} \cdot 2\text{H}_2\text{O}$)은 무색으로 조해성(潮解性)이며, 독성을 가진 결정체로서 물에 잘 녹는다. 또한 산성 플루오르화물($\text{KF} \cdot \text{HF}$)이 있다. 용도는 플루오르화나트륨과 같으며, 더욱이 산성 플루오르화물은 지르코늄과 탄탈륨의 야금(冶金)에 사용한다.
- (5) **플루오르화칼슘(CaF_2)** : 제2529호의 천연플루오르화칼슘(플루오르스파 · 플루오라이트)으로부터 제조하며 무색의 결정체로서 물에 녹지 않으며 ; 젤라틴 상태의 것도 될 수 있다. 야금(冶金)[특히 사금치석(carnallite)에서 마그네슘을 전해법으로 제조]의 용제(融劑 : flux)와 유리와 도자기 제조에 사용한다.
- (6) **삼플루오르화크로뮴($\text{CrF}_3 \cdot 4\text{H}_2\text{O}$)** : 암녹색 가루로 물에 녹으며, 수용액(水溶液)은 유리를 침식한다. 매염제(mordant)로 사용한다.

- (7) **플루오르화아연**(ZnF_2) : 백색 가루로서 물에 녹지 않으며, 목재 방부제 · 에나멜의 제조와 도금에 사용한다.
- (8) **플루오르화안티모니(antimony fluoride)** : 산화안티모니에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반응시키면 삼플루오르화안티몬(SbF_3)이 생성되며, 조해성(潮解性)이 있는 백색 바늘 모양 결정으로서 물에 녹는다. 오프플루오르화안티몬(SbF_5)은 점성질의 액체로서 쉬-소리를 내면서 물에 녹아서 수화물($2H_2O$)이 된다. 이들 염류는 요업 · 염색 매염제와 직물 프린트에 사용한다.
- (9) **플루오르화바륨**(BaF_2) : 산화바륨 · 황화바륨 · 탄산바륨에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반응시켜 제조되며, 백색 가루로서 물에 대부분 녹으며 ; 독성이 있다. 요업이나 에나멜의 안료 · 방부제 · 살충제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비(非)금속의 플루오르화물은 제외한다(제2812호).

(B) 플루오르화규산염

플루오르화규산염은 제2811호의 플루오르화규소산(H_2SiF_6)의 염이다.

- (1)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Na_2SiF_6) : 과인산염 제조의 부산물인 플루오르화실리콘으로부터 제조되며 백색 가루로서 냉수에만 약간 녹는다. 용도는 유백유리 제조와 에나멜의 제조 · 합성석 · 내산성 시멘트 · 살서제 · 살충제의 제조 ; 금속베릴륨의 추출제(전해법) ; 전해법에 의한 석의 정제 ; 라텍스의 응고 ; 방부제 등이다.
- (2) **플루오르화규산칼륨**(K_2SiF_6) :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냄새가 없고, 물에 약간 녹고 염산에는 녹는다. 유리질 법랑 프리트(enamel frit) · 요업 · 살충제 · 합성 운모의 제조 ; 알루미늄 · 마그네슘의 야금(冶金)에 사용한다.
- (3) **플루오르화규산칼슘**($CaSiF_6$) : 백색 결정성 가루로 ; 물에 매우 조금 녹으며 ; 요업의 백색 안료로 사용한다.
- (4) **플루오르화규산구리**($CuSiF_6 \cdot 6H_2O$) : 청색 결정성 가루로서 물에 녹으며, 독성이 있다. 잡색 효과(mottled effect)를 내는데나 살균제로 사용한다.
- (5) **플루오르화규산아연**($ZnSiF_6 \cdot 6H_2O$) : 결정성 가루로서 물에 녹으며 ; 칼슘화산물과 작용하여 플루오르화칼슘의 코팅이 생성된다. 콘크리트 경화 · 아연의 도금 · 방부제나 살균제(목재감염)로 사용한다.
- (6) **플루오르화규산바륨**($BaSiF_6$) : 백색 가루로 콜로라도의 투구풍덩이와 다른 곤충의 살균제 · 유해동물 박멸제로 사용한다.

(7) 그 밖의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규산마그네슘과 플루오르화규산알루미늄 ; 이들은 플루오르화규산아연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경화제로 사용하며, 플루오르화규산크로뮴과 플루오르화규산철은 염료공업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플루오르화규산알루미늄인 토파즈(topaz)는 제외한다(제71류).

(C)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錯塩 : complex salt)

- (1)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trisodium hexafluoroaluminate)(Na_3AlF_6) : 합성 빙정석(氷晶石)은 플루오르화 수소산으로 용해한 산화알루미늄에 염화나트륨을 혼합하여 침전하거나, 황화알루미늄에 플루오르화나트륨을 혼합·용융(溶融)하여 얻는 백색 결정상 덩어리이다. 이는 천연 빙정석(氷晶石)(제2530호)으로 대응되며, 알루미늄의 야금(冶金)·불꽃·에나멜·유리제조나 살충제로 사용한다.
- (2) 플루오르화붕산염(fluoroborate) : 플루오르화붕산나트륨(소독용)·플루오르화붕산칼륨(에나멜용)·플루오르화붕산크로뮴과 플루오르화붕산니켈(도금용) 등이다.
- (3) 플루오르화황산염(fluorosulphate) : 특히 플루오르화황산암모늄안티몬($(\text{NH}_4)_2\text{SO}_4\text{SbF}_3$)이나 “헨설투(Haen salt)”는 ; 유리화 금속을 부식하는 가용성 결정체로서 매염제(mordant)로 사용한다.
- (4) 플루오르화인산염(fluorophosphate) : 예를 들면, 천연 플루오르화인산마그네슘[와그너라이트(wagnerite)](제2530호)이나 플루오르화 인산 리튬 알루미늄(인반석)(제2530호)에서 얻는다.
- (5) 플루오르화탄탈산염[탄탈의 야금(冶金)에서 얻는다] ; 플루오르화 티탄산염·플루오르화 게르마늄산염·플루오르화니오브산염·플루오르화지르코늄산염[지르코늄의 야금(冶金)에서 얻는다]·플루오르화석산염 등

이 호에는 금속산 플루오르화물(베릴륨 등)과 산화플루오르착염이 포함되나, 비(非)금속의 산화플루오르화물은 제외한다(제2812호).

플루오르화포름산염·플루오르화착산염과 그 밖의 유기플루오르착염을 제외한다(제29류).

28.27 - 염화물 · 산화염화물 ·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 2827.10 - 염화암모늄
- 2827.20 - 염화칼슘
 - 그 밖의 염화물
- 2827.31 -- 마그네슘 염화물
- 2827.32 -- 알루미늄 염화물
- 2827.35 -- 니켈 염화물
- 2827.39 -- 기타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 2827.41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 2827.49 -- 기타
 -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 2827.51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 2827.59 -- 기타
- 2827.6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이 호에서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금속이나 암모늄이온(NH_4^+)의 염화물 · 산화염화물 · 수산화염화물 ·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 ·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을 분류한다. 비(非)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은 **제외한다(제2812호)**.

(A) 염화물

이 그룹에는 염화수소(제2806호)의 염을 분류한다.

주된 염화물은 다음과 같다.

- (1) **염화암모늄**(NH_4Cl)(sal ammoniac, ammonium muriate) : 염화수소에 암모니아로 중화시켜 얻는다. 결정성 덩어리나 승화하여 가루(powder) · 고운가루(flower) · 케이크 모양으로 얻는다. 순수한 경우에는 무색이며 불순한 것은 황색이며 ; 물에 녹는다. 금속 세척제 · 직물 염색이나 인쇄공업 · 유연제 · 비료 · 레클란셰 셀(Leclanché cell)의 제조 · 바니시나 글루(glue)의 경화제 · 전기도금 · 사진(정착액) 등에 사용한다.

염화암모늄을 함유하는 비료에 관하여는 제3102호의 해설서를 참조한다.

- (2) **염화칼슘**(CaCl_2) : 이 화합물은 천연 스타스푸르트 염(Stassfurt salt)으로부터 추출하거나 탄산나트륨 제조의 부산물로서 얻어진다. 순도에 따라 색상이 백색·황색이나 갈색으로 다르며 흡습성 물질로, 주물 상태의 것이나 용융(熔融) 형태의 것·다공성(多孔性)의 덩어리나 플레이크(flake)나 육분자의 물($6\text{H}_2\text{O}$)을 가진 수화물인 것도 있다(결정이나 입자). 한제(寒劑)·한냉 기후에서 콘크리트 작업용·도로먼지 방지제나 벽돌·돌 등을 까는데 경고토류제(hard-earth flooring)·촉매·유기 합성에서 탈수제나 축합제(예: 페놀에서 아민화물의 제조)와 가스 건조제·의약품에 사용한다.
- (3) **염화마그네슘**(MgCl_2) : 칼륨염의 추출 부산물이며, 무수물(無水物)인 경우는 투명한 덩어리(mass) 모양·실린더 모양·태블릿(tablet) 모양·프리즘 모양이며 수화물인 경우는 무색 바늘 모양이며, 물에 녹는다. 경(硬)시멘트 제조(예: 하나의 편으로 된 마루덮개)·면(cotton)이나 그 밖의 직물의 드레싱 제조·의약품인 살충제와 방부제·목재방화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서 천연 염화마그네슘[비스초파이트(bischofite)]은 **제외한다(제2530호)**.

- (4) **염화알루미늄**(AlCl_3) : 알루미늄에 염소를 반응시키거나 산화알루미늄에 염화수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무수물(無水物)이나 결정이며; 수용액(水溶液)에서는 시럽 상태이다. 무수염은 공기 중에 노출하면 발연하며 고체 염소는 유기 합성·매염제(mordant) 등으로 사용한다. 수용액(水溶液)은 목재의 방부·양모의 세척·소독제로 사용한다.

(5) 염화철

- (a) **염화제일철**(FeCl_2) : 무수물(無水物)[비늘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녹황색 가루]이나 수화물[예: $4\text{H}_2\text{O}$ (녹색이나 청색 결정)]이며; 녹색 수용액(水溶液)이다. 공기 중에서 산화하여 황색이 된다. 보통 산화방지를 위하여 소량의 알코올을 첨가하여 밀폐된 병에 넣어 제시한다. 환원제와 매염제로 사용한다.
- (b) **염화제이철**(FeCl_3) : 산화철·탄산철·금속철에 염산이나 왕수(aqua regia)로 용해되거나 적열(red-hot)한 철에 염소가스를 통하여 제조한다. 무수물(無水物)인 경우에는 황색·갈색이거나 심홍색의 덩어리로 조해성(潮解性)이며 물에 녹고, 수화되면($5\text{H}_2\text{O}$ 이나 $12\text{H}_2\text{O}$) 오렌지색·적색이나 자색 결정이고; 상거래 관습상의 액체 염화철은 암적색의 수용액(水溶液)이다. 염화제일철의 용도보다 광범위하다. 예: 공업용수의 정제·매염제·사진과 사진제판·녹청의 생성·의약품용(지혈제·혈관수축제 제조)와 주로 산화제로 사용한다.
- (6) **염화코발트**($\text{CoCl}_2 \cdot 6\text{H}_2\text{O}$) : 핑크색·적색이나 자색의 결정으로 가열하면 청색으로 변하며; 물에 녹는다. 습도계의 제조·은현 잉크(sympathetic ink)(글자를 써서 말렸다가 후에 가열하면서 나타나는 것)나 가스마스크에 흡착제로 사용한다.
- (7) **염화니켈**(NiCl_2) : 무수물(無水物)인 경우는 황색의 작은 비늘 형태나 플레이크(flake)모양이며 수화되면($6\text{H}_2\text{O}$) 조해성(潮解性) 녹색결정으로서; 물에 잘 녹는다. 매염제·전해(니켈 도금 육조)용·가스마스크에 흡착제로 사용한다.

(8) **염화아연**($ZnCl_2$) : 염화아연은 가열한 아연광(섬아연광이나 이극광)(제2608호)에 염화수소를 통과시켜 얻거나 ; 제2620호에 분류한 회(灰)나 잔유물로부터 추출하여 얻는다. 백색 결정성 덩어리(염화아연)·용융물이나 입자이다. 고도의 조해성(潮解性)이 있으며 물에 녹고 부식성이 있으며 독성이 강하다. 방부제·살균제·탈수제·목재 방화제·원피(原皮) 보존제·섬유소의 경화[벌커나이즈드 화이버(vulcanised fibre)의 제조]·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또한 용접용 용제·염색이나 인쇄·매염제·기름의 정제·치과용 시멘트의 제조나 의약품용(부식 방부제)에 사용한다.

(9) **염화주석(tin chloride)**

(a) **염화제일주석**($SnCl_2$) : 수지성의 분할 덩어리, 백색이나 노란색 결정($2H_2O$)이다. 또한 용액상대에서는 동일 색조이며, 부식성이 있고 ; 공기 중에서 변질한다. 환원제나 직물염색용 매염제·건염(建染)염료(dyers' tin salt)·견(silk)의 주석 사이징제(tin size)이나 주석(tin)의 전해도금에 사용한다.

(b) **염화제이주석**($SnCl_4$) : 무수물(無水物)상태에서는 무색이나 누르스름한 액체로 습한 대기에서 백연[하얀 연기(fume)]을 발생한다. 수화물은 무색의 결정이며 ; 젤라틴 상태의 덩어리인 것도 있다(염화아연). 직물의 매염제나 사이징제[견의 주석 사이징제(tin size)]와 염화제일주석과 금염(gold slat)의 혼합물로 하여 자기장식용 카시우스(Cassius) 자색(紫色)의 제조에 사용한다.

(10) **염화바륨**($BaCl_2$)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 witherite)]이나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 barytes)]에서 제조한다. 물에 녹고 무수물(無水物)이나 용융염(황색 가루)·물 이분자($2H_2O$)의 수화물[얇은 판 모양 결정(lamellar crystal)이나 타블렛 모양]이 있다. 염색·요업·살충제나 살서제와 공업용수의 정제 등에 사용한다.

(11) **염화티탄(titanium chloride)**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염화티탄($TiCl_4$)이며 탄소와 천연 이산화티탄[금홍석·판티탄·예추석(anatase)]의 혼합물에 염소를 반응시켜 티탄아염에서 얻는다.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무색이나 황색의 액체로 ; 습기있는 공기 중에서 연기가 나며 ; 물을 흡수하여 가수 분해된다. 염색용 매염제의 제조[티탄 매염제(titanium mordant)]·요업에서의 진주 빛깔용·연막(smoke-screen)제조·유기합성 제조에 사용한다.

(12) **염화크로뮴(chromium chloride)**

(a) **제일염화크로뮴**($CrCl_2$) : 바늘 모양 결정이나 감청색의 수용액(水溶液)으로서 환원제이다.

(b) **제이염화크로뮴**($CrCl_3$) : 연분홍이나 오렌지색 작은 조각이며 수화되면(6이나 $12H_2O$) 녹색이나 자색 결정이다. 용도는 직물 염색의 매염제·유연제·전기크로뮴도금·유기 합성과 소결 크로뮴의 제조 등이다.

(13) **염화제일망간**($MnCl_2$) : 천연 탄산염·능망간광[로도크로자이트(rhodocrosite)나 다이알로자이트(dialogite)](제2602호)에 염산을 반응시켜 얻는다. 무수물(無水物)인 경우는 장미색(rose clouded)의 결정 덩어리이며 ; 장미색 결정으로 수화(hydrated)되며(예: $4H_2O$), 조해성(潮解性)이며 물에 녹는다. 갈색 착색제나 특정 의약품의 제조·직물 프린팅에서 촉매제로 사용한다.

(14) **염화동(copper chloride)**

(a) **염화제일동**($CuCl$) : 결정성 가루나 무색의 결정으로서 특히 물에 녹지 않으며 공기 중에 산화한다. 니켈을 야금(冶金)할 때와 은을 야금(冶金)할 때 촉매로 사용한다.

(b) **염화제이동**($\text{CuCl}_2 \cdot 2\text{H}_2\text{O}$) : 조해성(潮解性)의 녹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직물 프린트·사진이나 전해 ; 촉매·방부제·소독제나 살충제 ; 염료공업·불꽃(pyrotechnics)(벙골불꽃)에 사용한다.

천연의 염화동인 난토카이트(nantokite)는 **제2530호**에 해당한다.

(15) 염화안티모니(antimony chloride)

(a) **삼염화안티모니**(SbCl_3) : 천연황화물[안광(stibnite)](제2617호)을 염화수소로 처리하여 제조된다. 투명한 덩어리는 무색이며 ; 대기 중에서 습기를 흡수하여 기름 상태와 같이 되며 ; 부식성이 있다. “청동화제(bronzing)”나 금속세척제·매염제·레이크 안료의 제조·가죽 완성제·산화안티모니의 제조나 동물 의약품에 사용한다.

(b) **오염화안티모니**(SbCl_5) : 무색 액체로 습한 공기에서 발연하며 ; 물에 분해된다. 유기 합성에 있어 염소 매체와 훈증제(fumigant)로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염화나트륨·염화칼륨은 **제외한다**(순수한 것이라도 각각 **제2501호**·**제3104호**나 **제3105호**에 분류한다). 또한 “석회의 염화물(chloride of lime)”로 잘못 알려진 상거래 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륨(**제2828호**)은 **제외한다**. 염화수은(염화제일수은과 염화제이수은)은 **제2852호**에 분류한다.

(B) 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이 그룹에는 금속의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을 분류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 청색 결정성 가루로 살충제·살진균제나 안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 수산화염화구리(녹염동광)는 **제외한다(제2603호)**.

(2) **수산화염화알루미늄**($\text{Al}_2\text{Cl}(\text{OH})_5 \cdot x\text{H}_2\text{O}$) : 황백색 가루로 화장품에서 항발한제(anti-perspirant)로 사용한다.

(3) **산화염크로뮴**(CrCl_2O_2) : 자극적인 냄새가 있고 적색 액체로 ; 습한 공기에서 연기가 나며 물에 녹는다. 유연제·매염제와 산화제로 사용한다.

(4) **산화염화석(tin chloride oxide)** : 회색이나 백색 무정형 덩어리로 물에 녹는다. 매염제(mordant)로 사용한다.

(5) **산화염화 안티모니**(SbClO) : 백색의 가루이다. 연막(smoke)·안료·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6) **산화염화납과 수산화염화납** : 산화납[리사지(litharge)]과 알칼리성 염화물을 반응시켜 얻는 백색 가루이다. 크로뮴산 납의 제조·수성페인트용 안료[카셀옐로우(Cassel yellow)]·유성 페인트나 디스템퍼(distemper)용 안료와 그 밖의 착안료(complex pigment)의 제조에 사용한다.

(7) 산화염화비스무트(BiClO) : 백색 가루로 인조진주 제조용 안료[“펄 화이트(pearl white)”]로 사용한다.

(C)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

이 그룹에는 브롬화수소(제2811호)의 염과 산화브롬을 분류한다.

- (1) **브롬화나트륨**(NaBr) : 브롬화암모늄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제되며 세절삭한 철에 브롬을 직접 반응시켜 얻은 브롬화철에 나트륨염으로 처리하여 제조된다. 섭씨 51도 이상에서 결정화되어 불안정한 무수물(無水物) 상태로 되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 결정화된 때는 수화물($2\text{H}_2\text{O}$)로서 큰 입방체(cubic)의 결정이 된다. 무색 흡습성이며, 물에 녹고 의약품용과 사진용에 사용한다.
- (2) **브롬화칼륨**(KBr) : 브롬화나트륨과 제법이 유사하며 동일 용도이며, 무수물(無水物)로 큰 결정이다.
- (3) **브롬화암모늄**(NH_4Br) : 암모니아에 브롬화수소를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공기에 노출하면 황색으로 변하고, 서서히 분해되며 가열하면 승화된다. 의약품(진정제) · 사진용(현상액의 억제제) · 방화용 물질로 사용한다.
- (4) **브롬화칼슘**($\text{CaBr}_2 \cdot 6\text{H}_2\text{O}$) : 탄산칼슘과 브롬화수소로부터 얻어지며 ; 조해성(潮解性)인 무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으며, 사진용과 의약품용에 사용한다.
- (5) **브롬화구리**
 - (a) **브롬화제일구리**(CuBr) : 브롬화제삼구리를 환원하여 얻으며 ; 무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지 않는다.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b) **브롬화제이구리**(CuBr_2) : 구리에 브롬을 직접 반응시켜 제조되며, 조해성(潮解性)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유기 합성과 사진용에 사용한다.
- (6) **그 밖의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 브롬화스트론튬(의약으로 사용)과 브롬화바륨을 포함한다.

(D)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이 그룹에는 요드화수소(제2811호)의 염과 산화요드화물을 분류한다.

- (1) **요드화암모늄**(NH_4I) : 암모니아나 탄산암모늄에 요드화수소를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결정의 흡습성 가루로 물에 잘 녹는다. 의약품용(혈액순환과 기증)과 사진용에 사용한다.
- (2) **요드화나트륨**(NaI)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이나 탄산나트륨에 요드화수소를 반응시키거나 증발철에 요드를 직접 반응시켜 얻은 요드화철에 나트륨염을 처리시키거나 ; 요드염을 하소(煨燒)하여 제조한다. 결정 무수물(無水物)로서 조해성(潮解性)이 있으며 물에 잘 녹고 빛과 공기에 노출하면 분해된다. 식염(table salt나 kitchen salt)을 요드화하는데 사용되거나 사진용에 사용한다.

- (3) **요드화칼륨(KI)** : 요드화나트륨과 제조방법이 유사하고 용도도 유사하다. 요드화나트륨보다 저장성이 비교적 용이하다. 무수물(無水物)로 무색이나 유백색(opaque)의 결정이다.
- (4) **요드화칼슘(CaI₂)** : 탄산칼슘과 요드화수소로부터 얻어지며 무색 광택의 결정이나 진주 모양의 백색의 비늘 모양이며 물에 녹고 공기 중에서 황색으로 변한다. 사진용에 사용한다.
- (5) **그 밖의 요드화물(iodide)과 산화요드화물(iodide oxide)** : 이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리튬의 요드화물[의약품(medicine)에 사용] · 스트론튬의 요드화물 · 안티모니의 요드화물 · 아연과 철의 요드화물[둘 다는 의약품(medicine)과 방부제에 사용한다] · 납의 요드화물(금속 광택이 있고 고무안료 제조용) · 비스무트(bismuth)의 요드화물[시약(reagent)]
- (b) 산화요드화안티모니 · 산화요드화구리와 산화요드화연
요드화수은(요드화제일수은과 요드화제이수은)은 **제외한다(제2852호)**.

28.28 - 하이포아염소산염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아염소산염 ·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2828.90 - 기타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하이포아염소산염 · 아염소산염 · 하이포아브롬산염과 상거래 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으로 거래되는 물품을 분류한다.

(A) 하이포아염소산염(hypochlorite)

하이포아염소산염은 중요한 물품으로 주로 표백용(“아염소산염 표백”)으로 사용한다. 불안정한 염으로 공기 중에서 변질되며 ; 약산(weak acid)에만 접촉해도 하이포아염소산이 생긴다. 쉽게 염소가 발생하는 하이포아염소산은 대단히 강력한 산화제와 표백제이다.

- (1)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text{NaClO} \cdot 6\text{H}_2\text{O}$) : 보통 수용액(水溶液)으로 저장되며 현재에는 상거래 관습상 “자벨수(eau de Javel)”로 칭한다. 염화나트륨용액을 전해시키거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에 황산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을 반응시키거나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에 염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염은 물에 매우 잘 녹고 무수(無水)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 열과 빛에 민감하며 불안정하다.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의 수용액(水溶液)은 무색이나 황색으로 염소의 냄새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염화나트륨을 불순물로 함유하고 있다. 식물성 섬유나 목재 펄프의 표백 · 살균 소독제 · 물의 정제나 히드라진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선명판[할레이션 방지막(antihalation plate)]에 대한 급속현상제(rapid developer)로서 사진용과 의약품에서 방부제[붕산과 혼합한 것은 데이킨용액(Dakin's solution)이라고 부른다]로 사용한다.
- (2) **하이포아염소산칼륨**($\text{KClO} \cdot 6\text{H}_2\text{O}$) : 이 염의 수용액(水溶液)은 “자벨수(eau de Javel)”로 칭하며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유사하다.
- (3)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염** : 이들은 하이포아염소산암모늄(하이포아염소산칼슘보다 강력한 살균제) · 하이포아염소산바륨 · 하이포아염소산마그네슘 · 하이포아염소산아연 등이 있으며 ; 모두 표백제나 살균제에 사용한다.

(B) 상거래 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상거래 관습상 “표백분(chloride of lime)”으로 잘못 알려진 이 물품은 주로 불순한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염화칼슘 때로는 산화칼슘이나 수산화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화칼슘에 염소를 포화시켜 얻으며 백색의 무정형 가루로 염화칼슘을 함유하는 경우는 흡습성이며 물에 녹고, 열 · 빛 · 이산화탄소의 작용에 민감하다. 동물성 섬유 · 유기 물질을 손상시키며 착색 물질을 파괴한다. 식물성 섬유나 목재 펄프의 표백 · 소독이나 살균[하이포아염소산으로 음료수의 살균(“javelisation”)에 의한 물의 정제]. 유독가스에 오염된 토양의 유포에 사용한다. 순수한 하이포아염소산칼슘은 결정성 덩어리이거나 염소 냄새를 가진 수용액(水溶液)이며 ; 이는 불순물보다 비교적 안정하다.

염화칼슘(CaCl_2)은 **제외한다(제2827호)**.

(C) 아염소산염(chlorite)

이 그룹에는 아염소산(HClO_2)의 염(salt)을 분류한다.

- (1) **아염소산나트륨**(NaClO_2) : 무수물(無水物)이나 수화물($3\text{H}_2\text{O}$)의 덩어리나 수용액(水溶液)이며 섭씨 100도까지는 안정하다. 강력한 염화제이며 부식성이 강하다. 염색이나 표백에 사용한다.
- (2) **아염소산알루미늄**(aluminium chlorite) : 아염소산나트륨과 동일 용도이다.

(D) 하이포아브롬산염(hypobromite)

이 그룹에는 하이포아브롬산(HBrO)(제2811호)의 염(salt)을 분류한다.

하이포아브롬산칼륨(potassium hypobromite)은 특정 유기화합물의 질소함량 측정에 사용한다.

28.29 -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 염소산염

2829.11 -- 염소산나트륨

2829.19 -- 기타

2829.90 - 기타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금속의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을 분류한다.

(A) 염소산염(chlorate)

이 그룹에는 염소산(HClO_3)(제2811호)의 염(salt)을 분류한다.

- (1) **염소산나트륨**(NaClO_3) : 염화나트륨의 수용액(水溶液)을 전해하여 얻으며 광택있는 무색의 결정[태블릿(tablets)]으로서; 물에 잘 녹으며; 쉽게 산소를 발생하며 때로는 불순물을 함유한다(예: 알칼리금속의 염화물). 산화제·유기 합성·직물프린팅(textile printing)[아닐린 블랙 염료(aniline black dye)]·뇌홍뢰관(fulminating primer)·성냥의 두부(head)의 제조·제조제 등에 사용한다.
- (2) **염소산칼륨**(KClO_3) : 염소산나트륨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되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그 밖의 성질은 염소산나트륨과 유사하다. 의약과 폭발성[예: 염소산칼륨에 기름성 물질을 혼합한 폭약(cheddite)]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 (3) **염소산바륨**($\text{Ba}(\text{ClO}_3)_2$) : 염화바륨의 용액을 전해하여 얻으며; 무색 결정이며 물에 녹는다. 불꽃의 녹색 착색물질·폭약제조·그 밖의 염소산염 제조에 사용한다.
- (4) **그 밖의 염소산염**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염소산암모늄(화약제조에 사용); 염소산 스트론튬[폭약과 적색광(red light)을 발하는 불꽃 제조]; 염소산크로뮴(매염제로 사용); 염소산구리(녹색결정으로서 염료·폭약과 녹색광을 발하는 불꽃 제조)

(B) 과염소산염(perchlorate)

이 그룹에는 과염소산(HClO_4)(제2811호)의 염을 분류하며 이 물품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불꽃과 폭약 제조에 사용한다.

- (1) **과염소산암모늄**(NH_4ClO_4) : 과염소나트륨으로부터 제조되며 무색 결정으로 물(특히 뜨거운 물)에 녹고; 열에 분해되며 때로는 폭발한다.
- (2) **과염소산나트륨**(NaClO_4) : 염소산나트륨의 냉수용액(冷水溶液)을 전해하여 얻으며, 조해성(潮解性)인 무색의 결정이다.
- (3) **과염소산칼륨**(KClO_4) : 과염소산나트륨으로부터 얻으며, 비교적 저용해도의 무색 결정가루로 충격에 폭발한다. 염소산염보다 강력한 산화제로서 화학공업에 사용한다.

(4) 그 밖의 과염소산염 :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과염소산바륨(수화물의 가루)과 과염소산납 ; 후자의 포화 수용액(水溶液)은 중질(重質)의 액체(비중 2.6)로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에 사용한다.

(C) 브롬산염(bromate)과 과브롬산염(perbromate)

이 그룹에는 브롬산(HBrO_3)(제2811호)의 염(salt)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브롬산칼륨(KBrO_3)과 과브롬산(HBrO_4)의 염이 있다.

(D) 요드산염(iodate)과 과요드산염(periodate)

여기에는 요드산(HIO_3)(제2811호)의 염(salt)과 과요드산(제2811호)을 분류한다.

요드산나트륨(NaIO_3)·요드산칼륨(KIO_3)과 요드산수소칼륨($\text{KH}(\text{IO}_3)_2$)은 의약과 화학분석의 시약으로 사용하며, 결정인 요드바륨은 요드산의 제조에 사용한다.

과요드산나트륨(monosodium과 disodium)은 요드산나트륨의 알칼리성 용액에 염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28.30 -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 - 황화나트륨

2830.90 - 기타

이 절의 서문에서 제외하도록 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금속의 황화물[제2811호의 황화수소(H₂S)의 염]을 분류한다. 예전의 명칭인 “sulphhydrate(sulphhydrate)”(황화수소)는 때로는 산황화물에 적용한다. 비(非)금속의 황화물은 **제외한다(제2813호)**.

(1) 황화나트륨(sodium sulphide)

(a) 황화나트륨(Na₂S) : 황산나트륨을 석탄(coal)으로 환원시켜 얻으며, 무수물(無水物)인 경우는 백색 덩어리나 판 모양[농축이나 용융(溶融 : fused) 황화물]으로 물에 녹고 공기 중에 황산화하며, 수화물(9H₂O)은 순도에 따라 무색이나 녹색 결정이다. 유기화합물 제조에 약(弱)환원제로 사용한다.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 공정에서 이 황화물은 황화하여 광석의 표면에 기름의 흡수를 증진시킨다. 또한 탈모제(제혁과 화장용품)와 구충제로 사용한다.

(b) 황화수소나트륨(NaHS) : 중성 황화물에 황화수소를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용도는 유연(tanning)과 염색에서 탈모제·니켈 정제에서 구리 흡착제·유기합성에서 환원제 등이다.

(2) 황화아연(ZnS) : 인조 황화아연은 알칼리 아연산에 황화나트륨을 침전시켜 수화물 형태로 얻는다. 백색 페이스트(paste)나 가루는 때때로 산화아연과 그 밖의 불순물을 함유한다. 순수 상태나 마그네시아와 혼합하여 고무공업 안료로 사용한다. 황산바륨과 같이 침전시키면 리토폰(lithopone)이 된다(**제3206호**). 은·구리 등으로 활성화시키면 **제3206호**의 루미노퍼(luminophore)가 생성된다. 그러나 **혼합하지 않는 것과 활성화하지 않는 황화아연만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섬(閃)아연광(zinc blende)(천연의 황산아연)(**제2608호**)·천연의 황산광물(천연 황산아연)(**제2530호**)은 **제외한다**.

(3) 황화카드뮴(CdS) : 인조 황화카드뮴은 카드뮴염(예: 황산카드뮴) 용액에 황화수소나 알칼리 황화물을 작용하여 침전시켜 제조된다. 화가용 황색안료(카드뮴 옐로우)·항광택(anti-glare) 유리 제조에 사용하며 ; 황산바륨으로 공침전(共沈澱 : co-precipitated)시키면 선명한 황색의 착색물이 되며 페인트와 요업에 사용한다(**제3206호**).

이 호에는 천연의 황화카드뮴[황카드뮴 광(greenockite)]을 **제외한다(제2530호)**.

(4) 황화수소암모늄(NH₄HS) : 바늘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결정으로 ; 휘발성이 강하고 사진과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5) 황화칼슘(CaS) : 황산칼슘과 탄산의 혼합물을 하소(煨燒)하여 얻으며 회색이나 황색의 덩어리로서 때로는 광택이 나며 거의 물에 녹지 않는다. 간혹 황산염과 그 밖의 불순물이 함유된다. 황산칼슘 단독으로나 산화비소나 석회로 처리하여 원피의 탈모제로 사용한다. 용도는 화장품의 탈모제·의약품용의 살균제·야금(冶金)과 형광 페인트의 제조 등이다.

(6) **황화철(iron sulphide)** : 가장 중요한 인조 황화철은 황화제일철(FeS)이며 황과 줄밥 철(iron filings)의 혼합물을 용융(溶融 : fused)하여 얻는다. 흑색의 판·봉이나 덩어리로 금속 광택이 있다. 황화수소의 제조와 요업에 사용한다.

천연 황화철은 **제외한다**[**제2502호**(배소(roasted)하지 않은 황화석), **제7103호**나 **제7105호**(백철광(마카사이트 : marcasite)) 참조]. 철과 비소의 천연 겹염[독사(미스피켈(mispickel))]이나 철과 구리의 천연 겹염[반동광(보르나이트(bornite))·황동광(찰코피라이트(chalcopyrite))]은 **제2530호**와 **제2603호**에 각각 분류한다.

(7) **황화스트론튬(SrS)** : 회색의 물품으로 공기와 접촉하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유연(tanning)공업·화장품에서 탈모제로 사용하며 형광도로 제조에 사용한다.

(8) **황화주석(tin sulphide)** : 인조 황화제이주석(SnS₂)은 황과 염화암모늄의 혼합물에 산화주석이나 아말감(amalgam)을 가하여 열처리하여 제조된다. 금황색 플레이크(flake)나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가열하면 승화(subliming)된다. 목재와 플라스터(plaster) 등을 청동빛으로 하는데 사용한다.

(9) **황화안티모니(antimony sulphide)**

(a) **인조 삼황화안티몬(artificial trisulphide)(Sb₂S₃)**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 소다]에 용해시킨 천연 황화물에 산을 반응시켜 적색이나 오렌지색의 가루로 얻어진다(침전 삼황화물). 단독이나 오황화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고무공업의 안료로 사용한다[안티모니주(朱)(vermilion)·안티모니 크림슨(crimson)]. 천연의 황화물을 용융(溶融 : fused)하면 흑색의 삼황화물이 생성되며 꽃불·성냥 머리(head) 혼합물·뇌관의 제조(염소산칼륨과 함께), 사진용 섬광제(염소산칼륨과 함께)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탄산나트륨으로 열처리하면 “광물성 커미즈(kermes mineral)”가 생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삼황화안티모니와 피로안티모니산나트륨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약품용으로 사용한다(**제3824호**).

(b) **오황화물(pentasulphide)(골든 안티모니 설파이드)(Sb₂S₅)** : 황화나트륨안티모니용액(Schlippe's salt)을 산(酸)처리하여 얻는다. 오렌지색 가루며 어두운 속에서도 시간이 경과하면 서서히 분해된다. 뇌관의 제조·고무의 가황이나 착색제·의약(토광제)과 동물용 의약에 사용한다.

천연의 황화안티모니[휘안광(스티브나이트(stibnite))]과 산화황화물[홍안광(kermesite)]은 **제외한다**(**제2617호**).

(10) **황화바륨(BaS)** : 천연 황산염[중정석(重晶石)](**제2511호**)을 탄(coal)으로 환원하여 얻으며 순수할 때는 백색의 가루나 덩어리이며 불순할 때는 회색이나 누르스름한 색이다. 독성이 있으며 용도는 황화스트론튬과 유사하다.

(11) **그 밖의 황화물**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황화칼륨(potassium sulphide)(중성과 산성)** : 황화수소칼륨은 메르캡탄(mercaptan) 제조에 사용한다.

(b) **황화구리(copper sulphide)** : 전극이나 내해수성 도료 제조에 사용하며 ; 천연의 황화구리 [코우벨라이트(covellite)·휘동광(chalcocite)]은 **제외한다**(**제2603호**).

(c) **황화납(lead sulphide)** : 요업에 사용하며 ; 천연의 황화납(방연광)은 **제외한다**(**제2607호**).

천연 황화수은[주사(朱沙 : cinnabar)·천연 버밀리온(vermilion)]과 인조 황화수은은 **제외하여** 각각 **제2617호**와 **제2852호**에 분류한다.

(12) **폴리황화물(polysulphide)**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데 동일 금속 황화물의 혼합물이다.

(a) **폴리황화나트륨(sodium polysulphide)** : 황에 탄산나트륨이나 중성 황화나트륨을 가하여 열처리하여 얻으며, 주로 이황화나트륨(Na_2S_2)·삼황화나트륨·사황화나트륨과 불순물(황산염·아황산염 등)을 함유하고 있다. 녹색 판 모양으로 잘 녹으며, 공기 중에서 산화하고 흡습성이 매우 강하며 ;밀폐한 용기에 보관한다. 주로 유기 합성(황화염료의 제조)의 환원제 ;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 공정 ; 폴리황화에틸렌의 제조·인조황화수은의 제조·황욕조(sulphur bath)나 움치료용(treatment of scabies) 혼합물에 사용한다.

(b) **폴리황화칼륨(potassium polysulphide)**["황의 간(liver of sulphur)"] : 폴리황화나트륨과 동일 용도와 특히 황욕조(sulphur bath)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천연 황화물은 제외한다.

- (a) 황화니켈[침니켈광(밀러라이트(millerite))](제2530호)
- (b) 황화몰리브데늄[황수연광(몰리브데나이트(molybdenite))](제2613호)
- (c) 황화바나듐[황화바나듐광(패트로나이트(patronite))](제2615호)
- (d) 황화비스무트[휘창연광(비스무티나이트(bismuthinite))](제2617호)

28.31 - 아이티온산염과 숄폭실산염

2831.1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숄폭실산나트륨

2831.90 - 기타

아이티온산염(dithionite) : 아이티온(dithionous)(“hydrosulphurous”)산의 염($H_2S_2O_4$)으로 유리(遊離)상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산화황으로 포화시킨 아황산수소의 용액을 환원(아연가루로)시켜 얻으며 화학 공업·직물 공업이나 제당 공업에서 주로 표백의 환원제로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티온산나트륨(sodium dithionite)**($Na_2S_2O_4$)으로 무수염은 백색 가루로서 물에 녹고 무색의 결정의 함수염($2H_2O$)을 가진 것이다. 유기 합성·염색공업·제지공업에 사용한다. 결정화된 상태에서도 급속도로 변질된다. 특정 용도(직물공업에 있어서 환원제)에서는 아이티온산나트륨을 포름알데히드로, 때로는 산화아연이나 글리세롤을 가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또한 아세톤으로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

아이티온산칼륨·아이티온산칼슘·아이티온산마그네슘·아이티온산아연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유사한 물질로서, 유사한 방법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성질과 용도도 유사하다.

이 호에는 **모든 안정화시킨 아이티온산염과 유사물질인 숄폭실산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sulphoxylate)**를 분류한다.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은 **제외한다(제2832호)**.

28.32 -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10 - 아황산나트륨

2832.20 - 그 밖의 아황산염

2832.30 - 티오황산염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금속의 아황산염(sulphite) : 아황산(H_2SO_3)의 염[수용액(水溶液) 상태만이 존재하며 제2811호의 이산화황에 상당하다]

(B) 금속의 티오황산염(thiosulphate) : 티오황산($H_2S_2O_3$)의 염으로 순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아황산펄프 폐액(lye)의 농축물(**제3804호**)과 유기물로 안정화시킨 “히드로술피이트(hydrosulphite)”로 칭하는 공업용 물품(**제2831호**)은 **제외한다**.

(A) 아황산염(sulphite)

이 호에는 중성 아황산염 뿐만 아니라 산성 아황산염을 분류한다.

(1) 아황산나트륨 : 아황산수소나트륨($NaHSO_3$) · 이아황산이나트륨($Na_2SO_3SO_2$ 이나 $Na_2S_2O_5$)과 아황산나트륨(Na_2SO_3)을 포함한다.

(a) 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phite) : 탄산나트륨의 수용액(水溶液)에 이산화황을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 가루이나 결정으로서 비교적 불안정하며 이산화황의 냄새를 갖고 있으며 물에 매우 잘 녹는다. ; 또한 황색의 농축액으로 제시한다. 유기 합성의 환원제 · 인디고 제조 · 모(wool)나 견(silk)의 표백과 라텍스의 처리에 가황제 · 가죽 제조 · 포도 재배(와인의 방부제)와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제에 사용한다.

(b) 이황산이나트륨(sodium metabisulphite, pyrosulphite, dry sulphite)(특정 언어권에서는 “sodium bisulphite crystal”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한다) : 아황산수소에서 얻으며 ; 특히 습한 공기 중에서는 비교적 급히 산화한다. 용도는 산성 아황산염과 동일하며 포도 재배와 사진용에 사용한다.

(c) 아황산나트륨(sodium sulphite) : 산성 아황산용액에 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켜 얻으며 무수물(無水物)(가루)이나 결정물($7H_2O$)로서 무색이며 물에 녹는다. 사진 · 양조(brewery) · 로진(rosin)의 처리 · 방부와 표백제 · 그 밖의 아황산염 · 티오황산염와 유기 염료 제조 등에 사용한다.

(2) 아황산암모늄($(NH_4)_2SO_3 \cdot H_2O$) : 암모니아에 이산화황을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고 공기에서 산화된다.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3) 아황산칼륨(potassium sulphite) : 아황산나트륨과 동일 형태이다.

(a) 아황산수소칼륨(potassium hydrogen sulphite) : 결정으로 염색 · 포도 재배에 사용한다.

(b) **이아황산이칼륨(dipotassium disulphite)** : 백색 가루나 비늘 모양이며 사진·펄트모자 공업에서 털의 캐로팅(carrotting)이나 방부제로 사용한다.

(c) **중성 아황산칼륨** : 결정($2\text{H}_2\text{O}$ 를 가진)으로 식물 프린트에 사용한다.

(4) 아황산칼슘(calcium sulphite)

(a) **아황산수소칼슘($\text{Ca}(\text{HSO}_3)_2$)** : 수소화칼슘에 이산화황을 반응시켜 얻으며 화학펄프 제조에서 리그닌(lignin)의 용해·표백(예: 스폰지)·염소 제거제·맥주의 흐림 방지제로 사용한다.

(b) **중성 아황산칼슘(CaSO_3)** : 백색 결정 가루나 바늘 모양인 함수염($2\text{H}_2\text{O}$)으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공기 중에서 풍해(風解)한다. 의약과 포도 재배에 사용한다.

(5) **그 밖의 황화물** : 아황산마그네슘(아황산칼슘과 동일용도)·아황산아연(방부제와 매염제)·아황산수소 크로뮴(매염제)을 포함한다.

(B) 티오황산염(thiosulphate)

(1) **티오황산암모늄($(\text{NH}_4)_2\text{S}_2\text{O}_3$)** : 티오황산나트륨에서 얻어지며 무색의 결정으로서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며 물에 녹는다. 사진의 정착 배스(fixing bath)과 방부제(antiseptic)로 사용한다.

(2) **티오황산나트륨($\text{Na}_2\text{S}_2\text{O}_3 \cdot 5\text{H}_2\text{O}$)** : 아황산나트륨용액에 황을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의 결정이며 물에 잘 녹고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진의 정착제(fixing agent)·종이나 직물의 표백에서 염소 제거제·크로뮴 유연제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3) **티오황산칼슘($\text{CaS}_2\text{O}_3 \cdot \text{H}_2\text{O}$)** : 황화칼슘을 산화하여 얻어진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물에 녹는다. 의약과 그 밖의 티오황산염의 제조에 사용한다.

(4) **그 밖의 티오황산염** : 티오황산바륨(진주 광택을 갖는 안료) ; 티오황산알루미늄(유기 합성용) ; 티오황산연[무인(phosphorus-free)성냥제조용]을 포함한다.

28.33 - 황산염 · 명반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황산나트륨
- 2833.11 -- 황산이나트륨
- 2833.19 -- 기타
 - 그 밖의 황산염
- 2833.21 -- 황산마그네슘
- 2833.22 -- 황산알루미늄
- 2833.24 -- 황산니켈
- 2833.25 -- 황산구리
- 2833.27 -- 황산바륨
- 2833.29 -- 기타
- 2833.30 - 명반
- 2833.4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A) 황산염(sulphate)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황산(H_2SO_4)(제2807호)의 금속염을 분류하지만, 그러나 **제2852호**에 분류하는 황산수은은 **제외하고**, 순수하더라도 **제3102호**나 **제3105호**에 분류하는 황산암모늄은 제외하며, 황산칼륨의 경우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104호**나 **제3105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황산나트륨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황산이나트륨(Na_2SO_4) : 무수물(無水物)이나 수화물 상태의 가루나 큰 투명 결정이고 공기에 풍해(風解)하며 물에 녹으며 이때 온도가 떨어진다. 10 수화물($Na_2SO_4 \cdot 10H_2O$)은 글라우버염(Glauber's salt)로 알려져 있다. "salt cake"는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의 부산물로 얻는 황산이나트륨(disodium sulphate)의 불순물(90~99% 순도)이며 이 호에 분류한다. 황산이나트륨은 염색의 조제 ; 유리 제조할 때의 용제(融劑 : flux)(유리병과 크리스탈과 광학 유리 제조) ; 원피 보존 유연제 ; 제지(특수화학펄프의 제조) ; 직물 공업의 사이징제(sizing material) ; 하제(下劑 : purgative)로서 의약 등에 사용한다.

천연의 황산나트륨[글로버라이트(glauberite) · 블로에다이트(bloedite) · 로이신(reussin) · 아스트라카나이트(astrakhanite)]은 **제외한다(제2530호)**.

(b) 황산수소나트륨($NaHSO_4$) : 질산 제조에서 생기는 잔류 소금으로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인 용융(溶融 : fused) 백색 덩어리로 생기며 황산 대용 · 금속의 표면처리 · 재생고무 · 안티모니나 탄탈륨의 야금(冶金)과 제조제로 사용한다.

(c) 이황화이나트륨($Na_2S_2O_7$)

(2) **황산마그네슘(magnesium sulphate)** : 이 호에는 인조 황산마그네슘($MgSO_4 \cdot 7H_2O$)(Epsom salt · Seidlitz salt)을 분류하는데 이는 황산고토석(kieserite)을 정제하거나 백운석(白雲石) [돌로마이트(dolomite)]에 황산을 반응시켜 얻는다. 무색의 결정으로 공기 중에서 다소 풍해(風解)하며 물에 녹는다. 식물 사이징의 충전제 · 가죽유연제 · 방화제와 하제(下劑 : purgative)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 황산마그네슘[키제라이트(kieserite)]을 제외한다(제2530호).

(3) **황산알루미늄(aluminium sulphate)**($Al_2(SO_4)_3$) : 보크사이트(bauxite)나 천연의 규산알루미늄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으며 ; 불순물은 주로 철화합물이다. 함수 상태($18H_2O$)에서는 백색 결정으로서 물에 녹고 사용하는 용액의 농도에 따라 손톱으로 쉽게 긁어지거나 단단하며 부서지기 쉽고 ; 서서히 가열하면 결정수가 없어져 최종으로 무수 황산염이 된다. 매염제 ; 원피(原皮)보존 유연제와 명반 유연제 ; 제지에 있어 펄프 사이징제 ; 염료공업에서 레이크 안료 제조 ·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와 그 밖의 티아조드(thiazode) 염료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수지와 공업용 수(水)의 정제 · 소화기 등에 사용한다.

염색에 사용하는 염기성 황산알루미늄도 이 호에 분류한다.

(4) **황산크로뮴(chromium sulphate)** :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제이황산크로뮴($Cr_2(SO_4)_3$)이며, 질산크로뮴에 황산을 반응시켜 얻으며 결정성 가루로 수용액(水溶液)에서는 보라색이나 녹색이다. 염색[크롬 매염(chrome mordanting)]이나 유연[크롬 유연(chrome tanning)]의 매염제(mordant)로 사용한다. 유연제로 사용하는 물품은 제이황산크로뮴이나 제일황산크로뮴($CrSO_4$)에서 유도된 염기성 황산크로뮴의 불안정한 용액이다. 이들 황산염은 이 호에 포함한다.

(5) **황산니켈(nickel sulphate)** : 이들 황산은 흔히 황산니켈($NiSO_4$)의 구조식을 가진다. 무수물(無水物)은 황색 결정이며, 수화되면($7H_2O$) 에메랄드 녹색 결정이나 청색 결정($6H_2O$)이며 ; 물에 녹는다. 전해 니켈도금 · 염색의 매염제 · 가스마스크 제조와 촉매에 사용한다.

(6) 황산구리(copper sulphate)

(a) **황산제일구리(Cu_2SO_4)** : 합성 에탄올 제조에 사용하는 촉매

(b) **황산제이구리($CuSO_4 \cdot 5H_2O$)** : 전해구리 정련의 부산물로 얻으며 또한 구리의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에 황산의 약용액(weak solution)을 반응시켜 얻는다. 청색 결정이나 결정 가루로서 물에 녹는다. 하소(煨燒)하면 백색 무수염으로 변하며 물과 친화성이 있어 물을 흡수한다. 농업에서 살균제(제3808호의 해설서 참조) ; 산포 혼합물의 조제 ; 산화제일구리나 무기구리 착색제의 제조 ; 염색공업[견(silk) 염색이나 양모(wool)를 흑색 · 자색과 엷은 자색으로 염색] ; 전해 구리 · 정련이나 구리 도금 ;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 조절제(광석의 천연 부력의 회복) ; 방부제 등에 사용한다.

천연의 함수 황산구리[수담반(brochantite)]은 제외한다(제2603호).

(7) **황산아연**($ZnSO_4 \cdot 7H_2O$) : 금속아연 · 산화아연 · 탄산아연이나 배소(焙燒 : roasted)한 섬(閃)아연광(blende)에 묽은 황산을 반응시켜 얻는다. 백색 유리 모양의 바늘 모양 결정으로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 공정에서 광석의 자연 부력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하며 ; 염색의 매염제 ; 전해 아연 도금 ; 방부제 ; 목재 보존 ; 건조제와 리토폰(lithopone)(제3206호) · 루미노퍼(luminophore)(구리로 활성화시킨 황산아연)(제3206호)와 여러 그 밖의 아연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한다.

(8) **황산바륨(barium sulphate)** : 이 호에는 인조나 침전 황산바륨($BaSO_4$)을 분류하는데 이는 황산이나 알칼리황산염에 염화바륨의 용액을 침전시켜 얻는다. 백색 가루로 매우 중질(重質)(비중 약 4.4)이고 물에 녹지 않으며 진한 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백색 안료 · 직물 사이징 충전제와 고무 · 도포제 · 판지 · 봉니(封泥 : luting) · 레이크(lake) 안료 · 착색제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X-레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방사성 사진에 사용한다.

천연의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 중방선석]은 제외한다(제2511호).

(9) **황산철(iron sulphate)**

(a) **황산제일철**($FeSO_4$) : 철을 깎아낸 부스러기(iron shavings)에 묽은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거나 이산화티탄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도 얻으며 때로는 구리 · 황산제일철과 비소와 같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 물에 잘 녹으며 ; 주로 미녹색 결정인 때는 함수상태(일반적으로 $7H_2O$)이며, 공기에 노출하면 갈색으로 변하고 ; 열처리하면 백색인 무수 황산염으로 변한다. 수용액(水溶液)은 녹색이나 공기에 노출하면 갈색으로 변한다. 황산제일철은 잉크 제조[철잉크(iron ink)] · 착색제[프루시안 블루(Prussian blue)] · 석탄가스 제조용의 혼합물[소석회(消石灰 : slaked lime)와 톱밥으로], 염색, 살충제 · 방부제와 제조용에 사용한다.

(b) **황산제이철**($Fe_2(SO_4)_3$) : 황산제일철에서 얻으며 가루나 갈색의 슬래브(slab) 모양이다. 물에 잘 녹으며 그 용액에서 백색의 함수물($9H_2O$)을 형성한다. 천연수와 하수의 정제 · 도살장에서 혈액 응고 · 철유연제(iron-tanning) · 살균제에 사용한다. 광석의 부력을 감소시키므로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조절제로 사용한다. 또한 염색의 매염제(mordant)와 구리나 아연의 전해 물품에 사용한다.

(10) **황산코발트**($CoSO_4 \cdot 7H_2O$) : 황산제일코발트에 황산을 반응시켜 얻으며 ; 물에 녹는 적색 결정이다. 전해 코발트도금 · 요업용 안료 · 촉매와 침전 수지산 코발트염의 제조(건조제)에 사용한다.

(11) **황산스트론튬(strontium sulphate)** : 인조 황산스트론튬($SrSO_4$)은 염화물의 용액에서 침전시켜 얻으며 백색 가루로 물에 잘 녹지 않고 불꽃 · 요업과 여러 가지 스트론튬염의 제조에 사용한다.

천연의 황산스트론튬[천청색(셀레스틴(celestine))]은 제외한다(제2530호).

(12) **황산카드뮴**($CdSO_4$) : 무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무수물(無水物)이거나 함수물($8H_2O$)이다. 황색카드뮴이나 그 밖의 착색제 · 의약의 제조 ; 표준 전지[웨스턴 셀(Weston cell)] ; 전기도금과 염색에 사용한다.

(13) 황산납(lead sulphate)

- (a) **인조 황산납($PbSO_4$)** : 질산납이나 초산납에 황산으로 침전시켜 얻으며 ; 백색 가루나 결정으로 물에 녹지 않는다. 납염(lead salt)의 제조에 사용한다.
- (b) **염기성 황산납** : 리사지(litharge) · 염화나트륨과 황산을 함께 가열하면 회색 가루로 제조한다. 또한 야금(冶金) 공정에서도 얻으며 이 경우는 백색 가루로 얻어진다. 안료 · 매스틱(mastic)의 제조와 고무공업용 혼합물의 제조에 사용한다.

천연의 황산납(황산연광)은 **제외한다(제2607호)**.

(B) 명반(alum)

명반은 삼가금속(알루미늄 · 크롬 · 망간 · 철이나 인듐)의 황산염과 일가금속(황산의 알칼리염이나 황산암모늄)의 황산염을 함유하는 함수 황산염이다. 단일 황산염이 명반을 치환하는 경향이 있지만 염색 · 방부제 · 화학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1) 알루미늄명반(aluminium alum)

- (a) **황산알루미늄칼륨($Al_2(SO_4)_3K_2SO_4 \cdot 24H_2O$)**(보통명반이나 칼륨명반) : 천연의 명반석(제2530호)(즉 수산화알루미늄이 혼합된 염기성 황산알루미늄칼륨)에서 얻는다. 명반은 이(二)성분의 황산염에서 제조되며 백색 결정성 고체로 물에 녹는다. 명반을 하소(煨燒)하면 밝은 백색 가루를 얻으며 이는 무수 결정이다(calcined alum). 황산알루미늄과 동일 용도 특히레이크(lake) 안료의 제조 · 염색과 유연제[명반 유연(alum-tanning)]에 사용하며 또한 사진과 화장품 등에 사용한다.
- (b) **황산알루미늄암모늄($Al_2(SO_4)_3(NH_4)_2SO_4 \cdot 24H_2O$)**(암모늄 명반) : 무색 결정으로 특히 뜨거운 물에 잘 녹는다. 순수한 염화알루미늄제조와 의약에 사용한다.
- (c) **황산알루미늄나트륨($Al_2(SO_4)_3Na_2SO_4 \cdot 24H_2O$)**(나트륨 명반) : 칼륨명반과 유사하며 풍해성(風解性)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염색의 매염제(mordant)로 사용한다.

(2) 크롬명반(chromium alum)

- (a) **황산칼륨크롬($Cr_2(SO_4)_3K_2SO_4 \cdot 24H_2O$)**(크롬명반) : 중크롬산의 황산용액에 이산화황으로 환원시켜 얻는다. 자적색의 결정으로서 물에 녹으며 공기 중에서 풍해한다. 염색에서 매염제 · 유연제(크롬유연제) · 사진용 등에 사용한다.
- (b) **황산크롬암모늄(크롬암모늄명반)** : 결정성 청색 가루로 유연제와 요업에 사용한다.

- (3) **철명반 : 황산 제이철 암모늄($(NH_4)_2SO_4Fe_2(SO_4)_3 \cdot 24H_2O$)** : 자색의 결정으로 공기 중에서 탈수되어 백색으로 변하며 ; **황산제삼철칼륨**도 자색의 결정이다. 둘 다 염색에 사용한다.

(C)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과황산염은 제2811호의 과황산의 염이다. 건조 상태에서는 상당히 안정하나 수용액(水溶液 : aqueous solution)에서는 가열하면 분해된다. 또한 강력한 산화제(oxidising agent)이다.

- (1) **과산화제이황산이암모늄**((NH₄)₂S₂O₈) : 황산암모늄의 진한 용액에 황산을 가하여 전해하여 얻으며 ;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고 습기와 열에 분해된다. 사진과 ; 식물표백이나 염색공정 ; 가용성 전분의 제조 ; 그 밖의 과황산염의 제조와 특정 전해조 · 유기 합성 등에 사용한다.
- (2) **과산화이황산이 나트륨**(Na₂S₂O₈) : 무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는다. 소독제 · 표백제 · 감극제 (전지)와 구리 합금의 조각에 사용한다.
- (3) **과산화이황화산이 칼륨**(K₂S₂O₈) : 무색의 결정으로 물에 잘 녹으며 표백 · 비누제조 · 사진 · 방부제 등에 사용한다.

천연의 황산칼슘[석고 · 무수(無水) 석고(anhydrite) · 카르스테나이트(karstenite)]은 **제외한다(제2520호)**.

28.34 - 아질산염과 질산염

- 2834.10 - 아질산염
 - 질산염
- 2834.21 -- 질산칼륨
- 2834.29 -- 기타

(A) 아질산염(nitrite)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아질산(HNO_2)(제2811호)의 금속염인 아질산염을 분류한다.

- (1) **아질산나트륨(NaNO_2)** : 질산나트륨을 납으로 환원하여 얻어지거나 ; 리사지(litharge)의 제조과정에서 얻어진다. 무색의 결정으로서 흡습성이 있으며 물에 잘 녹는다. 바트(vat)염료의 산화제 ; 유기 합성 ; 식육절임 ; 사진 ; 쥐약(rat-poison) 등에 사용한다.
- (2) **아질산칼륨(KNO_2)** : 아질산나트륨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거나 질산칼륨과 산화칼슘의 혼합물에 이산화황을 반응시켜 얻어진다. 백색 결정성 가루나 황색 봉 모양이나 그 밖의 아질산염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때도 있다. 물에 녹으며 공기 중에서 강력한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 있고 공기 중에서 변질한다. 용도는 아질산나트륨과 유사하다.
- (3) **아질산바륨($\text{Ba}(\text{NO}_2)_2$)** : 결정체로서 불꽃에 사용한다.
- (4) **그 밖의 아질산염** : 아질산암모늄이 포함되는데 불안정하고 폭발성이 있으며 ; 실험실에서 질소제조 용액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코발트아질산염은 **제외한다(제2842호)**.

(B) 질산염(nitrate)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제외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질산염 즉 질산(제2808호)의 금속염을 분류하며,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질산암모늄과 질산나트륨을 **제외한다(제3102호나 제3105호)**(아래의 그 밖의 제외물품 참조).

또한 염기성 질산염은 이 호에 분류한다.

- (1) **질산칼륨(KNO_3)**[초석(saltpetre or nitre)] : 질산나트륨과 염화칼륨에서 얻는다. 무색 결정 · 유리질의 덩어리나 백색 결정 가루로서, 물에 녹으며 불순한 것은 흡습성이 있다. 질산나트륨과 용도가 유사하며 ; 또한 화약제조 · 화학뇌관 · 불꽃 · 성냥과 야금(冶金)의 용제(融劑 : flux)로 사용한다.
- (2) **질산비스무트(bismuth nitrate)**
 - (a) **중성질산비스무트($\text{Bi}(\text{NO}_3)_3 \cdot 5\text{H}_2\text{O}$)** : 비스무트금속에 질산을 반응시켜 얻으며 ; 큰 결정체로서 무색이며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 있다. 산화비스무트나 이의 염 · 특정 바니시 제조에 사용한다.

- (b) **염기성 질산비스무트**($\text{BiNO}_3(\text{OH})_2$) : 중성 질산비스무트에서 얻으며 ; 진주광택이 있는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의약(위장병 치료) ; 요업[혼색(iridescent colour)] ; 화장품 ; 뇌홍뢰관(fulminate primer)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 (3) **질산마그네슘**($\text{Mg}(\text{NO}_3)_2 \cdot 6\text{H}_2\text{O}$) :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불꽃·내화(耐火)제품의 제조(산화마그네슘과 함께)·백열 가스 맨틀 등에 사용한다.
- (4) **질산칼슘**($\text{Ca}(\text{NO}_3)_2$) : 분쇄한 석회석에 질산을 처리하여 얻으며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의 백색 덩어리로서 물·알코올·아세톤에 용해된다. 불꽃·폭발물·성냥·비료 제조 등에 사용한다.
- (5) **질산제이철**($\text{Fe}(\text{NO}_3)_3 \cdot 6\text{H}_2\text{O}$ 이나 $9\text{H}_2\text{O}$) : 청색 결정으로 염색의 매염제·인쇄(단독이나 초산과 화합하여)에 사용한다. 순수한 수용액(水溶液)은 의약에 사용한다.
- (6) **질산코발트**($\text{Co}(\text{NO}_3)_2 \cdot 6\text{H}_2\text{O}$) : 자색·적색이나 갈색 결정으로서 물에 녹으며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며, 청색 코발트이나 황색 코발트·은현잉크(sym pathetic ink) 제조 ; 요업 장식품 ; 전해 코발트 도금에 사용한다.
- (7) **질산니켈**($\text{Ni}(\text{NO}_3)_2 \cdot 6\text{H}_2\text{O}$) : 불에 녹으며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 녹색 결정으로 요업(도색안료) ; 염색(매염제) ; 전해 니켈도금, 산화니켈이나 순수 니켈촉매 제조에 사용한다.
- (8) **질산제이구리**($\text{Cu}(\text{NO}_3)_2$) : 질산에 용해되어 있는 구리를 결정화하여 질산구리(온도에 따라 $3\text{H}_2\text{O}$ 이나 $6\text{H}_2\text{O}$)을 얻는다. 청색이나 녹색 결정이며 물에 녹고 흡습이 있으며 독성이 있다. 불꽃 ; 염료공업 ; 식물염색과 인쇄(매염제) ; 산화구리와 사진감광지 ; 전기 도금할 때 금속에 녹청색 윤기를 내는데 사용한다.
- (9) **질산스트론튬**($\text{Sr}(\text{NO}_3)_2$) : 질산에 산화스트론튬이나 황화스트론튬을 반응시키면 따뜻한 액체에서는 무수염, 차가운 액체에서는 함수염($4\text{H}_2\text{O}$)이 생긴다. 무색의 결정 가루로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며 물에 녹고 열에 분해된다. 적(赤)광의 불꽃, 성냥 제조에 사용한다.
- (10) **질산카드뮴**($\text{Cd}(\text{NO}_3)_2 \cdot 4\text{H}_2\text{O}$) : 산화카드뮴으로부터 제조되며 무색 바늘 모양으로 물에 녹고 조해성(deliquescent)이 있다. 요업의 착색이나 유리 제조에 사용한다.
- (11) **질산바륨**($\text{Ba}(\text{NO}_3)_2$) : 천연의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 witherite)](제2511호)으로부터 제조되며 무색이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가루로서 물에 녹으며 독성이 있다. 녹색 빛의 불꽃 ; 폭약·광학 유리·요업유약·바륨염과 질산염 제조 등에 사용한다.
- (12) **질산납**($\text{Pb}(\text{NO}_3)_2$) : 질산납은 연단(鉛丹 : red lead)에 질산을 반응시키거나 이산화납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 얻으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독성이 있다. 불꽃(노란 빛) ; 성냥의 제조·폭약과 특정 착색제 ; 유연제 ; 사진과 석판 ; 납염(lead salt)의 제조와 유기합성에 산화제로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한 **제외물품** 이외에 다음의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 (a) 질산수은(**제2852호**)
- (b) 아세토니트레이트(acetonitrate)(**제29류**)[예: 아세토질산철(매염제로 사용)]
- (c) 황산 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102호**나 **제3105호**)
- (d) 금속의 질산염의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제3602호**)

**28.35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폴리인산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1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2835.22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2835.24 -- 인산칼륨

2835.25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2835.26 -- 그 밖의 인산칼슘

2835.29 -- 기타

- 폴리인산염

2835.31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2835.39 -- 기타

(A) 포스피네이트(phosphinate)(하이포아인산염)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포스피네이트(phosphinate)(하이포아인산염)와 하이포아인산(H_3PO_2)(제2811호)의 금속염을 포함한다.

이들은 물에 녹으며 열에 분해하여 인화수소를 발생하고 자연 점화된다. 알칼리성 하이포아인산염은 환원제이다.

가장 중요한 하이포아인산염은 다음과 같다.

(I) 하이포아인산나트륨($NaPH_2O_2$) : 백색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결정 가루로 흡습성이 있다.

(II) 하이포아인산칼슘($Ca(PH_2O_2)_2$) : 무색 결정이나 백색 가루이다[끓는 석회유(milk of lime)에 백인(white phosphorus)을 반응시켜 얻는다].

앞에서 설명한 두 물품은 의약품용의 강장제(tonic)로 사용한다.

(III) 암모늄(ammonium) · 철(iron)과 납(lead)의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B) 포스포네이트(phosphonate)(아인산염)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제외하도록 한 물품을 **제외하고**, 포스폰산염(아인산염), 포스폰산(아인산)(H_3PO_3)(제2811호)의 금속염(중성이나 산성)을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아인산염은 암모늄 · 나트륨 · 칼륨과 칼슘의 염이며 수용성이고 환원제로 사용한다.

(C) 인산염(phosphate), 폴리인산염(polyphosphate)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제2809호의 인산에서 유도한 금속의 인산염과 폴리인산염을 분류한다.

(I) 인산염(phosphate) : 인산(H_3PO_4)의 금속염이다. 중요한 것으로 자주 “인산염(phosphate)”이라 한다. 일가금속과 인산이 반응하여 이루어진 염은 일염기성염·이염기성염·삼염기성염(즉 1금속원자·2금속원자·3금속원자를 함유한다)이 될 수 있다. ; 예를 들면, 3종의 인산나트륨, 즉, 이수소 오르토인산나트륨[일염기성 인산염(NaH_2PO_4)]·일수소 오르토 인산나트륨[이염기성 인산염(Na_2HPO_4)]과 인산삼나트륨[삼염기성 인산염(Na_3PO_4)]이 있다.

(II) 피로인산염(pyrophosphate)(이인산염) : 피로인산($H_4P_2O_7$)의 금속염

(III) 메타인산염(metaphosphate) : 메타인산(HPO_3)_n의 금속염

(IV) 그 밖의 폴리인산염 : 고중합도를 가지고 있는 폴리인산염의 금속염

가장 중요한 인산염과 폴리인산염은 다음과 같다.

(1) 인산암모늄과 폴리인산암모늄

(a) 오르토인산삼암모늄($(NH_4)_3PO_4$) : 수용액(水溶液)에서만 안정하다.

(b) 폴리인산암모늄(ammonium polyphosphate) : 몇 개에서 수 천 가지의 중합도를 갖고 있는 폴리인산암모늄이 존재한다. 이들은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물에 녹거나 녹지 않는다. ; 비료의 제조·바니시의 방화 첨가제나 방화 조제에 사용한다.

이들은 중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일인산암모늄)과 오르토인산수소암모늄(인산이암모늄)은 순수한 것인지와 그들의 상호 혼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105호)**.

(2)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과 폴리인산나트륨(polyphosphate)

(a) 오르토인산이수소나트륨($NaH_2PO_4 \cdot 2H_2O$)[일(一)염기성 인산염] :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가열하면 결정수를 잃고(가루화한 인산염) 피로인산염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메타인산염이 된다. 의약·인조직물 공업·단백질 물질의 응고제(coagulant)·전기도금 등에 사용한다.

(b) 오르토인산수소이 나트륨(Na_2HPO_4)[이(二)염기성 인산염] : 무수물(無水物)(백색 가루)이나 결정물($2 \cdot 7$ 나 $12H_2O$)이 있고 물에 녹는다. 견(silk)의 사이징제(염화석과 함께)·직물 방화제·목재 방화제·종이 방화제·직물의 매염제·크로뮴 유연제·광학 유리의 제조·요업의 광택용·베이킹 파우더의 제조·착색 물질·용접 용융제의 제조·전기도금·의약 등에 사용한다.

(c) **오르토인산삼나트륨**($\text{Na}_3\text{PO}_4 \cdot 12\text{H}_2\text{O}$)[삼(三)염기성 인산염] :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온도를 가하면 결정수의 일부를 상실한다. 금속 산화물을 녹일 때 용제(融劑 : flux) · 사진 · 세척제 · 공업용수의 연화(softening)와 보일러 스케일 제거제 · 설탕과 주정의 세정 · 유연(tanning) · 의약 등에 사용한다.

(d) **피로인산나트륨(sodium pyrophosphate)** : 피로인산사나트륨($\text{Na}_4\text{P}_2\text{O}_7$). 비흡습성 백색 가루로서 물에 녹는다. 세탁 · 세척제의 제조 · 혈액응고방지 혼합물의 제조 · 냉동제와 살균제의 제조 · 치즈 제조 등에 쓰인다.

피로인산 이수소이나트륨($\text{Na}_2\text{H}_2\text{P}_2\text{O}_7$)은 같은 모양이며 에나멜의 용제(融劑) · 밀크 중에서 카세인 침전 · 베이킹 파우더 · 맥아밀크가루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e) **삼인산오나트륨**($\text{Na}_5\text{P}_3\text{O}_{10}$)(트리폴리인산나트륨으로도 알려져 있다) :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 수질연화제 · 유화제나 식료품 보존제로 사용한다.

(f) **메타인산나트륨**[기초화학식(NaPO_3)_n] : 환식삼인산나트륨과 환식사인산나트륨이 있다.

(g) **폴리인산나트륨(sodium polyphosphate)** : 고중합도(high degree of polymerisation)를 갖고 있고 소수의 폴리인산나트륨은 메타인산나트륨으로 잘못 불리어지고 있다. 수십에서 수백까지의 고중합도를 갖고 있는 선상(linear) 폴리인산나트륨이 여러 개 있다. 이러한 폴리인산나트륨이 중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헥사메타인산나트륨[화학식($\text{Na}(\text{PO}_3)_n$)중합혼합물]으로 잘못 불리고 있으며 그래함염(Graham' salt)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유리질이나 백색 가루로서 물에 잘 녹는다. 수용액(水溶液)에서는 물에 함유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유리시키므로 수연화제(water softener)로 쓰인다. 또 세척제와 카세인 글루(casein glue)의 제조 · 정유의 유화(乳 化) · 사진 · 치즈 제조 등에 사용한다.

(3) **인산칼륨(potassium phosphate)** : 가장 알려진 것은 오르토인산이수소칼륨(KH_2PO_4)이다. 인산염 백아(phosphated chalk)에 오르토인산과 황산칼륨을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효모영양제와 비료로 사용한다.

(4)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a) **오르토인산수소칼슘**($\text{CaHPO}_4 \cdot 2\text{H}_2\text{O}$) : 오르토인산수소이나트륨에 산성염화칼슘 용액을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비료 · 동물사료의 광물성 첨가제 · 유리의 제조 · 의약품 등에 사용한다.

건조무수물로 계산하여 플루오르 함량이 0.2% 이상인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은 제외한다(제3103호나 제3105호).

(b) **오르토인산사수소칼슘**($\text{CaH}_4(\text{PO}_4)_2 \cdot 1$ 이나 $2\text{H}_2\text{O}$) : 뼈(bone)에 황산이나 염화수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용액으로 생기고 ; 열작용으로 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가 유리(遊離)된다. 물에 녹는 유일한 인산칼슘이다. 베이킹 파우더의 제조 · 의약 등에 사용한다.

(c) **오르토인산삼칼슘**($\text{Ca}_3(\text{PO}_4)_2$) : 이 호에는 침전인산칼슘(즉, 보통칼슘)을 분류한다. 뼈(bone)에 함유된 인산삼칼슘을 처음에는 염산, 다음에는 가성(苛性)소다로 처리하여 얻거나, 오르토인산삼나트륨의 용액에 암모니아에 염화칼슘으로 침전시켜 얻는다. 무정형인 백색 가루로 무취이며 물에 녹지 않는다. 염색의 매염제 ; 시럽의 정제 ; 금속의 침지(pickling) ; 유리와 도기 제조 ; 인(phosphorus)과 의약[예: 락토포스페이트(lactophosphate) · 글리세로인산염(glycerophosphate) 등의 제조에 쓰인다]

천연의 인산칼슘은 **제외한다(제2510호)**.

(5) **인산알루미늄(aluminium phosphate)** : 인조오르토인산알루미늄(AlPO_4)은 오르토인산삼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을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 회색이나 분홍색 가루이다. 요업에서 용제(融劑) · 견(silk)의 사이징제(산화주석과 함께) · 치과용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다.

천연의 인산알루미늄[와벨라이트(wavellite)]은 **제외한다(제2530호)**.

(6) **인산망간**($\text{Mn}_3(\text{PO}_4)_2 \cdot 7\text{H}_2\text{O}$) : 염화망간과 인산을 반응시켜 얻으며 단독이나 그 밖의 물품과 혼합된 자색 가루는 안료(Nuremberg violet)를 구성하며 예술가 등이 사용하거나 에나멜에 사용한다. 인산암모늄과 결합하면 부르군디(Burgundy) 바이올렛이 된다.

(7) **인산코발트(cobalt phosphate)** : 오르토인산코발트($\text{Co}_3(\text{PO}_4)_2 \cdot 2$ 나 $8\text{H}_2\text{O}$)는 오르토인산나트륨과 초산코발트와 반응시켜 얻으며 무정형의 핑크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산화알루미늄과 가열하면 에나멜에서 사용하는 테나르드(Thenard) 블루가 생성된다. 인산알루미늄과 결합하면 코발트 퍼플 제조에 사용한다.

(8) **그 밖의 인산염** : 바륨(유백제) · 크로뮴(요업용 착색제) · 아연(요업용 착색제 · 치과용 시멘트 · 발효조절 · 의약) · 철(의약)과 구리(요업용 착색제)의 인산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 인산염을 **제외한다**.

(a) 천연의 인산칼슘 · 인회석 · 천연의 인산알루미늄칼슘(**제2510호**)

(b) **제25류**나 **제26류**의 그 밖의 천연의 광물성 인산염

(c)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105호**)

(d) 귀석과 반귀석(**제7103호**나 **제7105호**)

28.36 -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2836.20 - 탄산이나트륨
- 2836.3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 2836.40 - 탄산칼륨
- 2836.50 - 탄산칼슘
- 2836.60 - 탄산바륨
 - 기타
- 2836.91 -- 탄산리튬
- 2836.92 -- 탄산스트론튬
- 2836.99 -- 기타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I) **탄산염(중성탄산염·탄산수소염이나 중탄산염·염기성탄산염)** : 비유리(non-isolated) 탄산(H_2CO_3)의 금속염으로 무수물(無水物)(CO_2)은 제2811호에 해당한다.
- (II)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 즉 많은 양의 산소를 함유하는 탄산염으로 과산화일탄산염(Na_2CO_4)이나 과산화이탄산염($Na_2C_2O_6$)이 있으며 ; 이들은 금속과산화물에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A) 탄산염(carbonate)

- (1) **탄산암모늄(ammonium carbonate)** : 황산암모늄(또는 염화물)과 백악(白堊 : chalk)의 혼합물을 열처리하거나 수증기 존재 하에 암모니아 가스를 이산화탄소에 결합시켜 얻는다.

상거래 관습상의 탄산암모늄은 여러 불순물(염화물·황산염·유기 물질)이 첨가되어 있고 탄산수소암모늄과 카르바산암모늄(NH_2COONH_4)을 함유하고 있다. 상거래 관습상의 탄산암모늄(이 호에 포함되는 것)은 백색 결정성 덩어리나 가루로 온수에 녹으며 습한 공기에서 변질되어 산성 탄산염이 형성되거나 이 상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탄산암모늄은 직물 염색과 날염의 매염제(mordant) ; 양모(wool)의 세정제 ; 의약품의 거담제(expectorant) ; 각성제(smelling salt)와 베이킹 파우더의 제조 ; 유연제 ; 고무공업 ; 카드뮴 야금(冶金) ; 유기 합성 등에 사용한다.

- (2)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 (a) **탄산이나트륨(중성탄산염)(Na_2CO_3)** : “탄산소다(carbonate of soda)”이나 “상거래 관습상의 소다(commercial soda)”로 잘못 칭하여지고 있으며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제2815호**). 염화나트륨과 암모니아의 용액에 이산화탄소를 가하여 열처리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산성 탄산나트륨을 가열·분해하여 얻을 수 있다.

무수물(無水物)(또는 탈수물)은 가루이며, 수화결정물은 $10\text{H}_2\text{O}$ 의 함유물로 공기에서 풍해(風解)하여 일수화물($\text{1H}_2\text{O}$)이 된다. 유리공업, 요업의 용제(融劑 : flux) ; 식물공업 ; 세탁제 ; 염색 ; 견(silk)의 주석 사이징제(tin size)(염화제이석과 함께) ; 스케일방지제(제3824호의 해설 참조) ; 수산화나트륨의 제조, 나트륨염과 인디고 ; 텅스텐·비스무트 안티모니나 바나듐(vanadium)의 야금(冶金) ; 사진 ; 공업용수정제와 석회의 혼합물·석회가스의 정제 등에 사용한다.

- (b) **탄산수소나트륨**(NaHCO_3) : 보통 결정 가루나 백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특히 온수에는 잘 녹으며 습한 대기에서는 변질되기 쉽다. 의약(신장결석증치료) ; 소화정과 탄산가스 음료수 제조 ; 베이킹 파우더 ; 요업 등에 쓰인다.

천연탄산나트륨[나트론(natron) 등]은 **제외한다(제2530호)**.

(3)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 (a) **탄산이칼륨**(K_2CO_3) : “포타시(potash)”라고 부적당하게 불리며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제2815호). 식물성 회(灰 : ash)나 사탕무 잔유물·양모에 붙어 있는 지방에서 얻으나 주로 염화칼륨에서 얻는다. 백색 결정성 덩어리이며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 강하고 물에 녹는다. 유리와 자기 제조 ; 아마 표백과 식물 세탁 ; 페인트 세척 ; 칼륨염·시안화물·프루시안(Prussian) 블루의 제조 ; 스케일 방지제 제조 등에 쓰인다.

- (b) **탄산수소칼륨**(KHCO_3) : 중성탄산염(K_2CO_3)에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제조하며 ; 백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약간의 조해성(deliquescent)이 있다. 소화기 ; 베이킹 파우더의 제조 ; 의약과 포도 재배[항산(anti-acid)]에 사용한다.

- (4) **침전탄산칼슘**(CaCO_3) : 이 호에 포함된 침전탄산칼슘은 칼슘염의 용액에 ;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증량제 ; 치약과 얼굴화장분(face-powder)의 제조 ; 의약(구루병의 치료) 등에 쓰인다.

이 호에는 천연의 석회석(제25류)과 초크(천연의 탄산칼슘)는 세척과 분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509호), 가루 상태의 탄산칼슘으로서, 그것의 미립자를 지방산(예: 스테아르산)으로 방수막도포한 것도 **제외한다(제3824호)**.

- (5) **침전탄산바륨**(precipitated barium carbonate) : 침전탄산바륨(BaCO_3)은 이 호에 포함되며 황화바륨과 탄산나트륨과 반응시켜 얻어진다.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공업용수의 정제, 구충제, 광학 유리와 순산화바륨의 제조에 사용하며 ; 에나멜 안료와 용제(融劑 : flux), 고무·종이·비누·설탕공업 ; 불꽃(녹색 빛)에 사용한다.

천연의 탄산바륨[위더라이트(witherite)]은 **제외한다(제2511호)**.

(6) 탄산납(lead carbonate)

인조탄산납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중성 탄산납**(PbCO_3) : 백색 가루로 결정이거나 무정형이며 물에 녹지 않는다. 요업과 안료 제조·매스틱(mastic)과 인디고(indigo)에 사용한다.
- (b) **염기성 탄산납**($2\text{PbCO}_3 \cdot \text{Pb}(\text{OH})_2$) : “백납(white lead)”으로 알려진 가루·케이크·스케일(scales)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이다. 백납은 초산에 납판이나 리사지(litharge)를 반응시켜 얻은 초산납으로부터 얻으며 건성 안료이다. 유성 페인트·용제(融劑 : flux)·특별한 매스틱(mastic)(예: 증기파이프 결합구)과 오렌지납의 제조에 쓰인다. 백납[단일이나 황산바륨·산화아연·석고나 고령토(kaolin)와 혼합물로 사용]은 크렘(Krems) 화이트·베니산(Venetian) 화이트·함브르그(Hamburg) 화이트 등을 생성한다.

천연의 탄산납(연백광)은 **제외한다(제2607호)**.

- (7)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 중성 탄산리튬염(Li_2CO_3)은 황산리튬에 탄산나트륨으로 침전시켜 얻으며 백색 결정성 가루로 무취이며 공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물에 약간 녹는다. 의약품(특히 체질의 노치료)·인공 광천수 혼합제의 제조에 쓰인다.

- (8) **침전탄산스트론튬(precipitated strontium carbonate)** : 침전탄산스트론튬(SrCO_3)은 이 호에 분류하며 매우 미세한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불꽃(붉은색 빛)·회색 유리(iridescent glass)·발광 페인트·산화스트론튬이나 스트론튬염의 제조에 쓰인다.

천연의 탄산스트론튬[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은 **제외한다(제2530호)**.

- (9) **탄산비스무트(bismuth carbonate)** : 이 호에 포함되는 인조 탄산비스무트는 염기성 탄산비스무트[(BiO) $_2\text{CO}_3$]이며 백색이나 황색 무정형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의약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다.

천연의 탄산수소비스무트(포창연 : bismutite)는 **제외한다(제2617호)**.

- (10) **침전탄산마그네슘(precipitated magnesium carbonate)** : 침전 탄산마그네슘은 이 호에 포함되는데 염기성의 수화된 탄산염이다. 탄산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을 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 얻는다. 무취 백색이며 사실상 물에 녹지 않는다. 경질(經質)탄산염은 조제사용 백색 마그네시아이며 입방체로 제시하기도 하며 하제로 쓰인다. 중질(重質)탄산염은 알갱이(granular)로 이루어진 백색 가루이다. 황산마그네슘은 종이나 고무 충전제 ; 화장품과 단열(절열) 물질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magnesite)]은 **제외한다(제2519호)**.

- (11) **탄산망간(manganese carbonate)** : 인조 탄산염(MnCO_3)은 무수물(無水物)이나 수화물($1\text{H}_2\text{O}$)이며 이는 이 호에 포함되고 고운 가루로 황색·핑크색이나 갈색으로 물에 녹지 않는다. 페인트·고무·자기의 안료 ; 의약 등으로 사용한다.

천연의 탄산망간[로도크로사이트(rhodocrosite)나 디알로사이트(dialogite)]은 **제외한다(제2602호)**.

(12) **탄산철(iron carbonate)** : 무수물(無水物)이나 수화물($1H_2O$)인 인조 탄산염($FeCO_3$)이 이 호에 포함되며, 황산철과 탄산나트륨을 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 얻는다. 회색 결정으로 물에 녹지 않으며, 쉽게 대기에서 산화하는데, 특히 습기가 있을 때 공기에 의해 쉽게 산화된다. 철염 및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천연의 탄산철[시더라이트(siderite)나 찰리바이트(chalybite)]은 **제외한다(제2601호)**.

(13) **탄산 코발트($CoCO_3$)** : 무수물(無水物)이나 수화물($6H_2O$)이 있으며 결정성 가루로 핑크색·적색과 녹색으로 물에 녹지 않는다. 에나멜의 안료와 산화코발트나 염의 제조에 사용한다.

(14) **탄화니켈(nickel carbonte)** : 보통 인조탄산니켈($NiCO_3$)은 옅은 녹색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 요업의 안료와 산화니켈의 제조에 사용한다. 수화염기성 탄산염은 녹색 결정으로 요업·유리제조·전기도금 등에 사용한다.

천연의 염기성 탄산니켈[자라타이트(zaratite)]은 **제외한다(제2530호)**.

(15) **탄산구리(copper carbonate)** : 인조 탄산염은 인조 공작석(malachite)이나 인조 남동(azure copper)이라 칭하는데 녹색가루로 독성이 있으며 물에 녹지 않으며 중성의 탄산염($CuCO_3$)이나 염기성 탄산염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산나트륨과 황산구리로부터 얻는다. 순수하거나 혼합물(청색이나 녹색의 탄산구리, 마운틴 블루이나 그린), 안료; 살충제·살진균제; 의약(인중독에 대한 수렴제와 해독제); 전기도금·불꽃 등에 사용한다.

천연의 탄산구리는 수화물에 상관없이[공작석(malachite)·남동광(azurite)] **제외한다(제2603호)**.

(16) **침전탄산아연(precipitaed zinc carbonate)** : 침전 탄산아연($ZnCO_3$)은 이 호에 분류하는데 탄산나트륨과 황산아연을 복분해하여 얻으며; 백색 결정의 가루로 사실상 물에 녹지 않는다. 페인트안료·고무·자기·화장품에 사용한다.

천연의 탄산아연[스미소나이트(smithsonite)]은 **제외한다(제2608호)**.

(B)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1) **과산화탄산나트륨(sodium peroxocarbonate)** : 과산화나트륨(함수에 상관없다)과 이산화탄소 액체를 처리하여 얻으며 백색 가루로 물에 녹아 산소와 중성탄산나트륨이 생긴다. 표백·가정용의 세척제·사진에 사용한다.

(2) **과산화탄산칼륨(potassium peroxocarbonate)** : 중성탄산칼륨의 포화용액을 영하 10도나 영하 15도에서 전해하여 얻으며 백색 결정으로 흡습성이 크며 습한 대기에서는 청색으로 변하고 물에 녹는다. 때로는 강력한 산화제로서 표백에 사용한다.

(3) **그 밖의 과산화탄산염** : 예를 들면, 암모늄이나 바륨의 과산화탄산염

28.37 - 시안화물 · 산화시안화물 · 시안착염

-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2837.19 -- 기타

2837.20 - 시안착염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시안화물 · 산화시안화물 · 시안착염을 분류한다.

(A) 시안화물(cyanide)

시안화물은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HCN)(제 2811 호)의 금속염이며 이들의 염은 매우 유독하다.

(1) 시안화나트륨(NaCN) : 탄산나트륨에 코크스(coke)나 탄화수소가스와 대기 중의 질소를 반응 시키거나, 칼슘시안아미드(제3102호 참조)에 목탄(charcoal)으로 처리하거나 미분탄(pulverised coal) · 나트륨과 암모니아가스를 상호 반응시켜 얻는다. 백색 가루로 판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으로 결정성이며 흡습성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쓴 아몬드 냄새를 가지고 있다. 녹는점(melting point) 근처에서는 산소를 흡수하여 ; 수화물이 된다. 밀폐한 용기에 제시한다. 금과 은의 야금(冶金) · 금과 은의 도금 · 사진 · 석판인쇄 · 구충제 · 살충제 등에 사용하며 또한 시안화수소의 제조 · 그 밖의 시안화물과 인디고(indigo) ; 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섬(閃)아연광(blende)에서 방연석(galena)을, 황동광(chalcopyrite)에서 황철광(pyrites)을 분리]에 사용한다.

(2) 시안화칼륨(KCN) : 시안화나트륨과 유사한 방법으로 얻으며 성질과 용도가 유사하다.

(3) 시안화칼슘(Ca(CN)₂) : 순도에 따라 백색이나 회색의 가루이며 물에 녹는다. 살충제와 살균제나 유해한 동물을 죽이는데 사용한다.

(4) 시안화니켈(Ni(CN)₂) : 수화물은 녹색 판 모양이나 가루이며 무정형은 황색 가루이다. 야금(冶金)과 전기 도금에 사용한다.

(5) 시안화구리(copper cyanide)

(a) 시안화제일구리(CuCN) : 백색이나 회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시안화제이구리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거나 의약에 쓰인다.

(b) 시안화제이구리(Cu(CN)₂) : 무정형의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쉽게 분해된다. 철에 구리도금과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6) 시안화아연(Zn(CN)₂) :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전기 도금에 사용한다.

이 호는 시안화수은(제2852호)과 시안화브롬과 같은 비(非)금속시안화물(제2853호)은 **제외한다**.

(B) 옥시아노 철(II)산염(페로시아나화물)

옥시아노 철(II)산염(페로시아나화물)은 옥시아노 철(II)산(페로시아나산)($H_4Fe(CN)_6$)(제2881호)의 금속염이며 산화물에 수산화칼슘이나 시안화물에 수산화제일철을 반응시켜 얻는다. 열에는 분해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옥시아노 철(II)산사암모늄**($(NH_4)_4Fe(CN)_6$) : 물에 녹는 결정으로 "흑니켈 도금(black nickel plating)"용으로 사용하며, 암모니아 합성에서 촉매로도 사용한다.
- (2) **옥시아노 철(II)산사나트륨**($Na_4Fe(CN)_6 \cdot 10H_2O$) : 황색 결정으로 공기에 의한 영향이 없고 물에 녹으며 특히 뜨거운 물에서는 더 잘 녹는다. 시안화수소와 프루시안(Prussian)블루·티오-인디고 등에 사용하며 ; 철강의 주물 경화 ; 사진염색(매염제 또한 청색 빛깔) ; 인쇄(아닐린 블랙 프린팅에서 산화제)와 살균제로 사용한다.
- (3) **옥시아노 철(II)산사칼륨**($K_4Fe(CN)_6 \cdot 3H_2O$) : 황색 결정으로 풍해(風解)성이 있고 물에 녹으며 특히 뜨거운 물인 경우 더 잘 녹는다. 옥시아노 철(II)산사나트륨과 동일 용도이다.
- (4) **옥시아노 철(II)산이구리**($Cu_2Fe(CN)_6 \cdot xH_2O$) : 자갈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화가들이 사용하는 페인트 플로렌틴(Florentine)이나 반다이크 브라운 제조에 사용한다.
- (5) **옥시아노 철(II)산의 겹염**[예: 옥시아노 철(II)산 이리튬 이칼륨($Li_2K_2(Fe(CN)_6)3H_2O$)]

이 호에는 프루시안블루(베를린블루)와 옥시아노철(II) 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안료를 제외한다(제3206호).

(C) 옥시아노 철(III)산염(페리시아나화물)

이는 옥시아노 철(III)산($H_3Fe(CN)_6$)(제2811호)의 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옥시아노 철(III)산삼나트륨**($Na_3Fe(CN)_6 \cdot H_2O$) : 옥시아노 철(II)산염(페로시아나화물)에 염소를 반응시켜 얻으며 ; 가넷트색의 결정으로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 있으며 물에 녹고 독성이 있으며 ; 수용액(水溶液)에서는 녹색이며 빛(광)에 의하여 분해된다. 염색과 인쇄 ; 사진 ; 주물경화 ; 전기도금 ; 유기 합성에 산화제로 사용한다.
- (2) **옥시아노 철(III)산 삼칼륨**($K_3Fe(CN)_6$) : 외양은 옥시아노 철(III)산나트륨과 유사하며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은 적고 용도는 동일하다.

(D) 그 밖의 화합물

무기염기의 옥시아노철(II)산 니트로실·옥시아노철(III)산니트로실·시아노 카드뮴산염·시아노 크로뮴산염·시아노 망간산염·시아노 코발트산염·시아노 니켈산염·시아노 구리산염 등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예를 들면, 화학분석에 사용하는 **옥시아노철(III)산니트로실나트륨**($Na_2Fe(CN)_5NO \cdot 2H_2O$)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아노수은산염은 제외한다(제2852호).

[28.38]

28.39 -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 규산나트륨

2839.11 -- 메타규산나트륨

2839.19 -- 기타

2839.90 - 기타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는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제2811호)에서 유도되고 유리(遊離)상태로 분리되지 않는 여러 규산(硅酸 : silicic acid)의 금속염(金屬鹽 : metal salt)인 규산염(硅酸鹽 : silicates dioxide)을 분류한다.

(1) 규산(硅酸)나트륨(sodium silicate) : 모래와 탄산나트륨이나 황산나트륨을 용융(溶融 : fused)하여 얻는다. 화학조성은 매우 여러 가지이며(단일 규산염·메타규산염·피로규산염 등) 제법과 순도에 따라 수화도와 용해도가 다르다. 무색 결정이거나 가루로 유리 상태의 덩어리(물-유리)나 점조성(粘稠性)의 수용액(水溶液)이다. 그들은 광의 맥석(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금속광물)을 탈응집(脫凝集)시켜 부유 선광 조절제(flotation regulator)로 사용한다. 또한 규산염 비누 제조에 충전제 ; 판지와 응결석탄 제조용 접착제 ; 내화(耐火)재료 ; 새의 알(egg)의 보존 ; 방부접착제 제조·내(耐)부패성 시멘트의 경화제 ; 봉니(luting) 도금·인조석 제조 ; 세제 제조 ; 금속의 산세척 ; 스케일 방지제(제3824호 해설 참조)에 사용한다.

(2) 규산칼륨(potassium silicate) : 규산나트륨과 유사한 목적에 사용한다.

(3) 규산망간(manganese silicate)(MnSiO₃) : 오렌지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자기의 안료·페인트와 바니시의 건조제로 사용한다.

(4) 침전 규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silicate) : 규산나트륨이나 규산칼륨에서 얻는 백색 가루이다. 내화(耐火) 진흙·치과용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다.

(5) 규산바륨(barium silicate) : 백색 가루로 산화바륨과 광학 유리 제조에 사용한다.

(6) 규산납(lead silicate) : 가루나 유리 모양 백색 덩어리이며 요업(窯業)에서 유약(glaze)으로 사용한다.

(7) 그 밖의 규산염 : 앞에서 설명한 규산염을 **제외한** 상거래 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과 규산세슘[황색 가루로 요업(窯業)에 쓰인다]·규산아연(형광튜브의 코팅)·규산알루미늄(내화물과 자기 제조)을 포함한다.

천연의 규산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규회석(규산칼슘)·장미회석(규산망간)·페나사이트(phenacite)[또는 페나카이트(phenakite)][규산베릴륨(beryllium silicate)]·목설광[규산티타늄(titanium silicate)](**제2530호**)

(b) 규산구리(규공작석·녹동광)·규산수소아연(이극광)·규산지르코늄(지르콘)과 같은 광석(**제2603호**·**제2608호**·**제2615호**)

(c) **제71류**의 귀석(貴石)

28.40 -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사붕산이나트륨[정제 붕사(精製硼砂)]

2840.11 -- 무수물(無水物)

2840.19 -- 기타

2840.20 - 그 밖의 붕산염

2840.3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A) 붕산염(borate)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정(normal)붕산이나 오르토붕산(H_3BO_3) (제2810호)을 주로 한 여러 붕산의 금속염인 붕산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결정화나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는 붕산염(硼酸鹽 : borate)을 분류한다. 또한 소금 호수에서 착염수(錯鹽水 : complex brine)를 증발시켜 얻는 천연의 붕산염도 분류한다.

(1) 붕산나트륨(sodium borate)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붕산나트륨($Na_2B_4O_7$)이다. 천연의 붕산염 용액의 결정화하거나 천연의 붕산칼슘이나 탄산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얻으며 무수물(無水物)이나 $5H_2O$ 나 $10H_2O$ 를 갖는 수화물이다. 가열 후 냉각하면 유리 상태의 덩어리가 생긴다. 리넨(linen)이나 종이의 경직 ; 금속의 용제(融劑 : flux) ; 에나멜 용제(融劑) ; 법랑의 안료 제조 · 특수유리(광학 유리 · 전구유리) · 접착이나 광택제 ; 금의 정제 ; 붕산염과 안트라퀴논염료(anthraquinone dye)의 제조에 사용한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붕산나트륨(메타붕산염 · 이붕산수소)이 있다.

(2) 붕산암모늄(ammonium borate) :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붕산염($NH_4BO_2 \cdot 2H_2O$)이다. 무색 결정으로 물에 매우 잘 녹으며,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이 있고 열에 분해하여 무수붕산의 용융(溶融 : fused) 바니시를 생성하여 ; 내화(耐火)재료로 사용한다. 또 모발로션(hair-lotion)의 고착제(fixative)와 ; 종이의 코팅과 전해 축전기(capacitor)의 전해액 조성으로 사용한다.

(3) 침전 붕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borate) : 천연의 붕산염과 염화칼슘과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가루로 내화(耐火)물질 · 결빙방지조제와 세라믹 절연물로서 사용하며, 방부제로도 사용한다.

(4) 붕산망간(manganese borate) : 주로 사붕산망간(MnB_4O_7)으로 핑크색 가루로 물에 약간 녹으며 페인트나 바니시의 건조제로 사용한다.

(5) 붕산니켈(nickel borate) : 옅은 녹색 결정으로 촉매에 사용한다.

(6) 붕산구리(copper borate) : 청색 결정으로 매우 단단하며 물에 녹지 않는다. 안료(도자제품 착색용)와 방부제 · 살충제에 사용한다.

- (7) **붕산납(lead borate)** : 회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건조제·유리 제조·자기안료와 전기도금에 사용한다.
- (8) **그 밖의 붕산염** : 붕산 카드뮴은 형광등의 코팅에 사용한다. 붕산 코발트는 건조제(drier)로, 붕산 아연은 방부제로 사용하거나 내화 직물에 사용하거나 세라믹의 용제(融劑)로, 붕산 지르코늄은 유백제(opacifier)로 사용한다.

천연의 붕산나트륨[커어나이트(kernite)·붕사(tincal)]은 이 호의 붕산염 제조에 사용하고, 천연의 붕산칼슘[판더마이트 붕사(pandermite)·프라사이트(priceite)]은 붕산의 제조에 사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528호).

(B)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붕산염보다 산화되어 있고 쉽게 산소를 방출시키는 금속의 과붕산염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HBO_3 이나 HBO_4 와 같이 몇 개의 산(酸)에 해당하는 구조식을 가진 착화합물(complex product)이다.

과붕산염은 주로 다음과 같다.

- (1) **과산화붕산나트륨(과붕산염)** : 붕산수용액(水溶液)에 과산화나트륨을 반응하거나 붕산나트륨의 수용액(水溶液)에 과산화수소로 처리하여 얻으며, 백색 무정형 가루나 결정($1\text{H}_2\text{O}$ 나 $4\text{H}_2\text{O}$)이다. 아마포·직물과 짚의 표백; 가죽의 보존; 가정용 세제의 제조·세정제와 방부제에 사용한다.
- (2) **과산화붕산 마그네슘(magnesium peroxoborate)** :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의약이나 치약의 제조에 사용한다.
- (3) **과산화붕산칼륨(potassium peroxoborate)** : 과붕산나트륨과 유사한 성질과 용도이다.
- (4) **그 밖의 과산화붕산염** : 과산화붕산 암모늄, 과산화붕산 알루미늄, 과산화붕산 칼슘이나 과산화붕산 아연은 백색 가루로 의약·치약의 제조에 사용한다.

28.41 -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 2841.30 - 중크롬산나트륨
- 2841.50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 · 과망간산염
- 2841.61 -- 과망간산칼륨
- 2841.69 -- 기타
- 2841.70 - 몰리브덴산염
- 2841.8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 2841.90 - 기타

이 호에는 산화금속산의 염이나 과산화금속산의 염[무수물(無水物)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주된 화합물의 계열은 다음과 같다.

(1) 알루미늄산염 : 수산화 알루미늄의 유도체이다.

- (a) **알루미늄산나트륨(sodium aluminate)** : 보크사이트(bauxite)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물에 녹는 백색 가루로 수용액(水溶液)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염색에서 매염제(알칼리성 매염제) ; 레이크 안료의 제조 ; 종이 사이징(sizing) ; 비누의 충전제 ; 플라스터(plaster)의 경고화 ; 유백유리 제조와 공업용수의 정제에 사용한다.
- (b) **알루미늄산칼륨(potassium aluminate)** : 보크사이트(bauxite)를 수산화칼륨으로 녹여서 얻는다. 백색 마이크로 결정의 덩어리로 흡습성이 있으며 물에 녹는다. 알루미늄산나트륨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 (c) **알루미늄산칼슘(calcium aluminate)** : 전기로에서 보크사이트(bauxite)와 산화칼슘을 공융(fusion)하여 얻으며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염색(매염제) ; 공업용수의 정제(이온교환제) ; 제지(사이징제)와 ; 유리 · 비누 · 특수시멘트 · 광택제와 그 밖의 알루미늄산염의 제조에 사용한다.
- (d) **알루미늄산크로뮴(chromium aluminate)** : 산화알루미늄 · 플루오르화칼슘과 중크로뮴산암모늄의 혼합물을 열처리하여 얻으며 요업안료에 사용한다.
- (e) **알루미늄산코발트(cobalt aluminate)** : 알루미늄산나트륨과 코발트염으로부터 얻어지며 순수 상태나 산화알루미늄과 혼합하여 코발트블루(Thenard 블루)를 조성하며, 세루리안(cerulean) 블루(알루미늄산아연과 같이) · 아주(azure)블루 · 스몰트(smalt) 블루 · 색서니(Saxony) 블루 · 세이브(Sèvres) 블루 등의 안료에 사용한다.
- (f) **알루미늄산아연(zinc aluminate)** : 백색 가루로 알루미늄산나트륨과 유사한 목적에 사용한다.
- (g) **알루미늄산바륨(barium aluminate)** : 보크사이트(bauxite) · 중정석(重晶石 : barytes) 과 석탄(coal)으로부터 제조되며 ; 백색이나 갈색 덩어리이다. 공업용수의 정제와 스케일방지제에 사용한다.

(h) **알루미늄산납(lead aluminate)** : 산화납과 산화알루미늄의 혼합물을 열처리하여 얻는다. 쉽게 녹지 않는 고체로서, 백색 안료·내화(耐火)벽돌과 내화(耐火) 라이닝(linings)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의 알루미늄산베릴륨[크리소베릴(chrysobery)]은 **제외한다**(경우에 따라 **제2530호**·**제7103호**나 **제7105호**).

(2) **크로뮴산염(chromate)** : 중성이나 산성 크로뮴산염(중크로뮴산염)·트리카로뮴산염·테트라크로뮴산염·과크로뮴산염은 여러 크로뮴산에서 특히 정크로뮴산(H_2CrO_4)이나 순수 상태에서 분리되지 않는 중크로뮴산($H_2Cr_2O_7$)에서 유도된 것이다.

기본적인 이들 대부분의 독성염은 다음과 같다.

(a) **크로뮴산아연(zinc chromate)** : 아연염에 중크로뮴산칼륨을 가하여 처리하면 수화크로뮴산아연이나 염기성 크로뮴산아연을 생성하며, 가루이고, 물에 녹지 않는다. 단독이나 혼합하여 황색 아연안료를 얻고 프루시안블루와 혼합하면 녹색 아연안료가 형성된다.

(b) **크로뮴산납(lead chromate)**

중성 인조 크로뮴산염은 중크로뮴산나트륨에 초산염을 반응시켜 얻으며 황색이나 때로는 오렌지색이나 적색 가루로 침전방법에 따라 다르다. 단일이나 혼합하여 황색크로뮴안료를 얻으며 에나멜·요업·페인트나 바니시 제조 등에 사용한다.

염기성 크로뮴산염은 단일이나 혼합하여 적색크로뮴이나 페르시안레드를 얻는다.

(c) **크로뮴산나트륨(sodium chromate)** : 크로뮴산나트륨($Na_2CrO_4 \cdot 10H_2O$)은 천연의 산화크로뮴철에 석탄(coal)과 탄산나트륨을 혼합하여 배소(焙燒)하여 크로뮴을 제조하는 동안에 얻는다. 큰 황색 결정으로 조해성(潮解性)이 있고 물에 잘 녹는다. 염색(매염제)·유연제·잉크제조·안료나 그 밖의 크로뮴산염이나 중크로뮴산염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사진섬광가루 제조에 황화안티모니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중크로뮴산나트륨($Na_2Cr_2O_7 \cdot 2H_2O$)은 크로뮴산나트륨에서 제조되며 조해성(潮解性)이 있는 적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열처리하면 무수물(無水物)과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함유하며 조해성(潮解性)이 적은 중크로뮴산염[예: 용융(溶融: fused)이나 캐스트(cast) 크로뮴]으로 변한다. 유연제(크로뮴탄닝); 염색(매염제와 산화제); 유기 합성에서 산화제; 사진; 프린팅; 불꽃; 지방의 정제나 탈색; 중크로뮴산염의 전지와 중크로뮴산염의 젤라틴(빛의 영향에서 뜨거운 물에 녹지 않는 물품으로 전환한다)의 제조; 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부력을 감소시킨다); 석유류 정제; 방부제로 사용한다.

(d) **크로뮴산칼륨(potassium chromate)** : 크로뮴산칼륨(K_2CrO_4)은 아크로뮴산염에서 제조되며 황색 결정으로 물에 녹고 독성이 있다.

중크로뮴산칼륨($K_2Cr_2O_7$)은 아크로뮴산염에서 제조되며 등색 결정으로 물에 녹고 독성이 강하다. 중크로뮴산염 더스트(dust)와 증기는 비골(nasal bone)과 연골(cartilage)을 침해하며; 이 용액은 상처에 감염된다.

크로뮴산칼륨과 중크로뮴산칼륨은 크로뮴산나트륨과 중크로뮴산나트륨과 유사한 목적에 사용한다.

(e) **크로뮴산 암모늄(ammonium chromate)** : 크로뮴산 암모늄($(\text{NH}_4)_2\text{CrO}_4$)은 삼산화 크로뮴의 용액에 암모니아로 포화하여 제조한다. 황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사진과 염색에 사용한다.

중크로뮴산 암모늄($(\text{NH}_4)_2\text{Cr}_2\text{O}_7$)은 천연의 산화크로뮴산철[크로마이트(chromite)]서 얻으며 ; 적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사진 ; 염색(매염제) ; 유연제 ; 지방이나 기름의 정제 ; 유기 합성 등에 사용한다.

(f) **크로뮴산칼슘($\text{CaCrO}_4 \cdot 2\text{H}_2\text{O}$)** : 중크로뮴산나트륨과 백아(chalk)에서 제조되며 ; 열처리 하면 무수물(無水物)로 되어 황색으로 변한다. “엘로우 울트라마린(yellow ultramarine)”과 같은 황색 안료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단일크로뮴산칼슘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g) **크로뮴산망간(manganese chromate)** : 중성 크로뮴산염(MnCrO_4)은 산화망간과 무수크로뮴산으로부터 제조되며 갈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염색의 매염제에 사용한다. 염기성 크로뮴산염은 갈색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수성페인트에 사용한다.

(h) **크로뮴산철(iron chromate)** : 크로뮴산 제이철($\text{Fe}_2(\text{CrO}_4)_3$)은 염화제이철 용액에 크로뮴산칼륨을 처리하여 제조되며 황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또한 단독이나 혼합한 염기성 크로뮴산철은 시더린 엘로우라 불리는 안료로 페인트에 사용하며 프루시안블루와 결합하여 모조 녹색아연을 생성하며 또한 야금(冶金)에 사용한다.

(ij) **크로뮴산스트론튬(SrCrO_4)** : 크로뮴산칼슘과 유사하며 단독이나 혼합하여 황색 스트론튬안료를 얻는다. 화가용 페인트 제조에 사용한다.

(k) **크로뮴산바륨(BaCrO_4)** : 염화바륨의 용액에 크로뮴산나트륨으로 침전시켜 얻으며 ; 광택 황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독성이 있다. 단독이나 혼합하여 크로뮴산칼슘에서 얻은 유사물품과 같이 황색 바륨을 얻는데 이는 때로는 “엘로우 울트라마린(yellow ultramarine)”으로 칭할 때도 있다. 화가용 페인트화 에나멜과 유리공업 ; 성냥의 제조와 염색에서 매염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천연의 크로뮴산염[강연광(crocoisite)](제2530호)

(b) 크로뮴산염으로 제조된 안료(제3206호)

(3) **망간산염 · 과망간산염** : 망간산($\text{H}_2\text{MnO}_4 \cdot \text{비유리}$)과 과망간산(HMnO_4)[수용액(水溶液)에서만 존재]에 해당하는 염

(a) **망간산염(manganate)** : 망간산나트륨(Na_2MnO_4)은 천연의 이산화망간(제2602호 일연 망간광)과 수산화나트륨의 혼합물을 용융(溶融)하여 제조되며 ; 녹색 결정으로 냉수에 녹고, 뜨거운 물에 분해된다. 금 야금(冶金)에 사용한다.

망간산칼륨(K_2MnO_4)은 작은 녹흑색 결정으로 과망간산염 제조에 사용한다.

망간산바륨(BaMnO_4)은 이산화망간에 질산바륨을 혼합하고 열처리하여 얻으며 에메랄드 녹색 가루이다. 황산바륨과 혼합하여 녹색 망간안료를 얻으며 가정용 페인트에 사용한다.

- (b) **과망간산염(permangante)** : 과망간산나트륨($\text{NaMnO}_4 \cdot 3\text{H}_2\text{O}$)은 망간산염으로부터 제조되며 ; 적흑색 결정으로 조해성(潮解性)이 있고 물에 녹는다. 소독제 · 유기 합성 · 모(毛)표백에 사용한다.

과망간산칼륨(KMnO_4)은 망간산염에서 제조하거나, 이산화망간과 수산화칼륨의 혼합물을 산화시켜 제조한다. 금속 광택이 있는 자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피부를 착색시키고 ; 또한 적자색 수용액(水溶液)이나 태블릿(tablet) 모양이 있다. 강력한 산화제로 화학시약 · 유기 합성(사카린제조) ; 야금(冶金)(니켈정제) ; 지방성물질 · 수지 · 견사(silk yarn)와 섬유와 짚의 표백 ; 물의 정제 ; 방부제 ; 염료[모(wool) · 목재와 두발 염색] ; 가스마스크 ; 의약에 사용한다.

과망간산칼슘($\text{Ca}(\text{MnO}_4)_2 \cdot 5\text{H}_2\text{O}$)은 알칼리성 망간산염과 산화칼슘의 용액을 전해하여 제조하며 ; 암자색 결정이고 물에 녹는다. 산화제와 소독제 · 염색 · 유기 합성 · 물의 정제 · 종이 펄프 표백에 사용한다.

- (4) **몰리브덴산염(molybdate)** : 몰리브덴산염 · 파라몰리브덴산염과 폴리몰리브덴산염[디(di-) · 트리(tri-) · 테트라(tetra-)]은 노르말몰리브덴산(H_2MoO_4)이나 그 밖의 몰리브덴산에서 유도된 것이다. 크로뮴산염과 유사한 점이 있다.

중요한 염은 다음과 같다.

- (a) **몰리브데늄산암모늄** : 몰리브데늄금속의 야금(冶金)에서 얻어지며 수화된 결정으로 약간 녹색이나 황색을 띤 빛깔로 열에 분류한다. 화학시약 · 안료나 내화물 제조 · 유리공업 등에 사용한다.

- (b) **몰리브덴산나트륨** : 수화된 결정으로 광택이 있고 물에 녹는다. 시약 · 안료의 제조 · 의약에 사용한다.

- (c) **몰리브덴산칼슘** :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야금(冶金)에 사용한다.

- (d) **몰리브덴산염** : 크로뮴산염과 공침(共沈)하는 인조 몰리브덴산염은 스카렛 크로뮴안료를 생성한다.

천연의 몰리브덴산염[울페나이트(wulfenite)]은 제외한다(제2613호).

- (5)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 텅스텐산염 · 파라텅스텐산염과 과텅스텐산염은 노르말텅스텐산(H_2WO_4)과 그 밖의 텅스텐산에서 유도된 것이다.

주요한 염(salt)은 다음과 같다.

- (a) **텅스텐산암모늄** : 암모니아에 텅스텐산을 녹여 얻으며 ; 백색 결정 가루로 수화물이며 물에 녹는다. 내화성 섬유와 그 밖의 텅스텐산염의 제조에 사용한다.

- (b) **텅스텐산나트륨** : 텅스텐금속 야금(冶金)·망간철중석[울프라마이트(wolframite)](제2611호)과 탄산나트륨으로부터 얻으며 ; 백색의 판 모양이나 결정이며 수화물이 있고 진주색이며 물에 녹는다. 텅스텐산 암모늄과 동일하며 용도가 ; 식물 인쇄에 매염제·레이크(lake) 안료 제조·축매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c) **텅스텐산칼슘** : 백색의 광택 있는 스케일 모양이며 물에 녹지 않는다. ; 엑스레이 막(X-ray screen)과 형광 튜브 제조에 사용한다.
- (d) **텅스텐산바륨** : 백색 가루로 단일이나 혼합하여 텅스텐 화이트나 텅스테이트 화이트의 이름으로 화가용 페인트에 사용한다.
- (e) **그 밖의 텅스텐산염** : 칼륨[내화(耐火)섭유]·마그네슘(X-Ray 스크린)·크로뮴(녹색 안료)과 납(안료)의 텅스텐 산염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천연의 텅스텐산칼슘[회중석(scheelite)] 광석(제2611호)
- (b) 천연의 망간(망간중석)이나 철(철중석)의 텅스텐 산염(제2611호)
- (c) 발광성의 텅스텐산(예: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무기의 루미노퍼(luminophore)(제3206호)에 분류한다.

- (6) **티탄산염**(오르토·메타와 과산화티탄산염·중성이나 산성 티탄산염)은 여러 티탄산과 수산화물에서 유도되는데 그 기본 재료는 이산화티탄(TiO_2)이다.

티탄산 바륨과 티탄산납은 백색 가루로 안료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의 티탄산철[티탄산광(ilmenite)](제2614호)과 무기플루오르화티탄산염(제2826호)은 제외한다.

- (7) **바나듐산염**(오르토·메타·피로·하이포바나듐산염·중성이나 산성 바나듐산염) : 오산화바나듐(V_2O_5)이나 그 밖의 산화바나듐에서 유도된 바나듐산에서 얻는다.

- (a) **메타바나듐산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metavanadate)](NH_4VO_3) : 황백색 결정성 가루로 찬 물에 약간 녹으며 뜨거운 물에는 매우 잘 녹아 황색 용액으로 된다. 축매 ; 식물 염색이나 인쇄에 매염제 ; 페인트나 바니시의 건조제 ; 자기의 착색제·필기와 인쇄잉크 제조 등에 사용한다.

- (b) **바나듐산나트륨**[오르토와 메타(ortho-and meta-)] : 함수상태의 백색 가루나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야닐린-블랙 염색과 인쇄에 사용한다.

- (8) **철산염과 아철산염** : 철산염과 아철산염은 각각 수산화제이철($Fe(OH)_3$)과 수산화제일철($Fe(OH)_2$)에서 유도한다. 철산칼륨은 흑색 가루로 물에 녹아 적색 액체가 된다.

철산화물과 그 밖의 금속산화물이 단순히 혼합하여 오염안료를 조성하며 제3207호로 분류하는 단순 혼합물을 “철산염(ferrate)”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호에는 실제로 자력이 있는 산화철(Fe_3O_4)로 된 아철산염(제2601호)과 해머 스케일(hammer scale)(제2619호)은 제외한다.

- (9) **아연산염(zincate)** : 무정형의 수산화아연($Zn(OH)_2$)에서 유도된 화합물이다.
- (a) **아연산나트륨** : 산화아연에 탄산나트륨을 반응이나 금속아연에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켜 얻는다. 페인트에 사용하는 황화아연 제조에 사용한다.
 - (b) **아연산철** : 요업 안료에 쓰인다.
 - (c) **아연산 코발트** : 순수하거나 산화코발트나 그 밖의 염(salt)과 혼합되었으며 코발트그린이나 린만스(Rinmann's) 그린을 조성한다.
 - (d) **아연산바륨** : 수산화바륨의 수용액(水溶液)에 암모니아성 황화아연으로 침전시켜 제조하며 백색 가루로 물에 녹는다. 페인트에 사용하는 황화아연의 제조에 사용한다.
- (10) **석산염(stannate)**[오르토(ortho-)·메타(meta-)]은 석산(stannic acid)에서 유도된 것이다.
- (a) **석산나트륨($Na_2SnO_3 \cdot 3H_2O$)** : 주석·수산화나트륨·염화나트륨·질산나트륨을 용융(溶融 : fused)시켜 얻는다. 단단한 덩어리나 불규칙한 덩어리이며 물에 녹고 백색이나 불순물의 함유 정도(나트륨과 철염)에 따라 색이 다르다. 직물 염색이나 인쇄(매염제) ; 유리나 요업공업 ; 비소에서 납을 분류하는데 ; 견(silk)의 석 사이징(tin size)과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b) **석산알루미늄** : 황산석과 황산알루미늄의 혼합물을 열처리하여 재조하며 ; 백색 가루이다. 에나멜이나 요업공업에서 유백제로 사용한다.
 - (c) **석산크롬** : 주로 요업이나 화가용 페인트의 도색 착색제로 사용하고 또한 견(silk)의 석 사이징제(tin size)에 사용한다.
 - (d) **석산코발트** : 단일이나 혼합하여 스카이블루안료를 조성하며 페인트에 사용한다.
 - (e) **석산구리** : 단일이나 혼합하며, “틴 그린(tin green)”이라 칭한다.
- (11) **안티몬산염(antimonate)** : 오산화안티몬(Sb_2O_5)에 해당하는 여러 산의 염이며 비산염과 유사한 점이 있다.
- (a) **메타안티몬산나트륨**[류코나인(leuconine)] : 오산화 안티모니와 수산화나트륨에서 제조하며 ; 백색 결정성 가루로 약간 물에 녹는다. 에나멜이나 유리 공업에서 유백제(opacifier)로 사용하며 티오안티몬산나트륨(Schlippe's salt)의 제조에 사용한다 (제2842호).
 - (b) **안티몬산칼륨** : 가장 중요한 것은 안티몬산 수소칼륨이며 금속안티몬과 질산칼륨을 혼합하여 하소(煨燒)하여 제조하며 ; 백색 결정성 가루로 의약[하제(下劑)]과 요업 안료에 사용한다.
 - (c) **안티몬산납(lead animonate)** : 오산화안티모니와 연단(鉛丹 : red lead)을 용융(溶融 : fused)하여 얻으며 ; 황색 가루이고, 물에 녹지 않는다. 단독이나 산화 염화납을 혼합하여 나폴리 옐로우(Naples yellow : 안티모니 옐로우)·요업 안료·유리나 화가용 페인트에 사용한다.
- 안티몬화물은 제외한다(제2853호).
- (12) **연산염(plumbate)** : 양쪽성(兩-性)의 이산화납(PbO_2)에서 유도된 것이다.
- 연산나트륨은 착색제로 사용하며, 갈슘(황색)·스트론튬(밤색)이나 바륨(흑색)의 연산염은 성냥과 불꽃제조에 사용한다.

(13) 산화금속산이나 과산화금속산의 그 밖의 염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탄탈산염(tantalate)과 니오브산염(niobate)
- (b) 게르마늄산염(germanate)
- (c) 레늄산염(rhenate)과 과레늄산염(perrhenate)
- (d) 지르코늄산염(zirconate)
- (e) 비스무트산염(bismuthate)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귀금속의 화합물(제2843호)
- (b) 방사성 원소나 방사성 동위원소(제2844호)
- (c) 이트륨·스칸듐이나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 금속(제2846호)
- (d) 수은(제2852호)

플루오르화티탄산염(fluorotitanate)과 같은 플루오르착염(complex fluorine salt)은 제2826호에 해당한다.

28.42 -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

2842.1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90 - 기타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비(非)금속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

이 염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A) **뇌산염·시안산염·이소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을 분류하며 분리되지 않는 시안산($\text{HO-C}\equiv\text{N}$)이나 이소시안산($\text{HN}=\text{C}=\text{O}$)·뇌산($\text{H-C}\equiv\text{N}^+-\text{O}^-$)과 그 밖의 이성체나 티오시안산($\text{HS-C}\equiv\text{N}$)의 금속염

(1) **뇌산염(fulminate)** : 다소 불명확한 성분으로 조성된 화합물로 매우 불안정하며, 약간의 충격이나 열작용(예: 스파크)으로 폭발한다. 이들은 점화약으로 구성되어 뇌관 제조에 사용한다.

(2) **시안산염(cyanate)** : 암모늄·소듐과 칼륨의 시안산염은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 제조에 사용하며, 알칼리토류의 시안산염도 있다.

(3) **티오시안산염(thiocyanate)** : 티오시안산염은 분리되지 않은 티오시안산($\text{HS-C}\equiv\text{N}$)의 금속염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a) **티오시안산암모늄(NH_4SCN)** : 무색 결정으로 조해성(潮解性)이 있으며 물에 잘 녹고 공기와 빛의 반응 하에서는 적색으로 변하며, 열에 의하여 분해된다. 전기도금 ; 사진 ; 염색이나 인쇄(특히 사이징이 된 견직물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 ; 혼합 냉각제 · 시안화물이나 헥사시아노철(Ⅱ)산염(hexacyanoferrate) · 티오우레아(thiourea) · 구아니딘(guanidine) · 플라스틱 · 접착제 · 제초제 등에 사용한다.

(b) **티오시안산나트륨(NaSCN)** : 티오시안산암모늄과 동일한 외관이며, 독성을 갖고 있다. 사진 · 염색과 인쇄(매염제) ; 의약 ; 실험시약 ; 전기도금 ; 인조 겨자기름 ; 고무공업 등에 사용한다.

(c) **티오시안산칼륨(KSCN)** : 티오시안산나트륨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직물공업 ; 사진 ; 유기 합성[예: 티오우레아(thiourea) · 인조 겨자기름과 염료] · 티오시안산염의 제조 · 혼합 냉각제 · 구충제 등에 사용한다.

(d) **티오시아산칼륨**($\text{Ca}(\text{SCN})_2 \cdot 3\text{H}_2\text{O}$) : 무색 결정으로 조해성(潮解性)이 있으며, 물에 녹는다. 염색이나 인쇄의 매염제(mordant)·셀룰로오스(cellulose)의 용제 ; 면(綿)의 머서가공(mercerising)제 ; 요드화칼륨 대용으로 의약(동맥경화치료) ; 페로시아산염과 그 밖의 티오시아산염의 제조 ; 파치먼트[parchment : 양피지]의 제조에 사용한다.

(e) **티오시아산구리**

티오시아산제일구리(CuSCN)는 백색·회색이나 황색 가루나 페이스트(paste) 모양으로 물에 녹지 않는다. 식물 인쇄에 매염제(mordant)·선박용 도료의 제조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티오시아산제이구리($\text{Cu}(\text{SCN})_2$)는 흑색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쉽게 티오시아산제일구리로 변한다. 뇌관·성냥제조에 사용한다.

뇌산제이수은과 티오시아산제이수은은 **제외한다(제2852호)**.

(B) **아비산염과 비산염**

이들은 비산의 금속염으로 아비산염은 아비산의 염이며 비산염은 비산(제2811호)의 염이다. 이들은 독성이 매우 강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아비산나트륨**(NaAsO_2) : 탄산나트륨과 산화비소를 용융(溶融 : fused)하여 제조되며 백색이나 회색 판 모양이나 가루로 물에 녹는다. 포도 재배(살충제) ; 원피(原皮 : hide) 보존 ; 의약 ; 비누와 방부제 제조 등에 사용한다.
- (2) **아비산칼슘**(CaHAsO_3) :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살충제에 사용한다.
- (3) **아비산구리**(CuHAsO_3) : 아비산나트륨과 황산구리에서 얻으며 녹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살충제·셀레 그린(Scheele's green)으로 불리는 착색제와 특정 녹색 안료(顔料) 제조에 사용한다(제3206호 해설 참조).
- (4) **아비산아연**($\text{Zn}(\text{AsO}_2)_2$) : 아비산칼슘(calcium arsenite)과 외관·용도가 유사하다.
- (5) **아비산납**($\text{Pb}(\text{AsO}_2)_2$) : 백색 가루로 물에 약간만 녹으며 포도 재배(살충제)에 사용한다.
- (6) **비산나트륨**(오르토·메타와 피로 비산염) : 중요한 것은 오르토비산수소이나트륨(Na_2HAsO_4)(결정화 온도에 따라 $7\text{H}_2\text{O}$ 이나 $12\text{H}_2\text{O}$)과 오르토 비산삼나트륨[무수물(無水物)이나 $12\text{H}_2\text{O}$]이 있다. 산화비소와 질산나트륨의 반응으로 얻어지며 무색 결정이나 녹색 가루로 의약품[피어슨 용액(Pearson's solution)]·방부제·살충제와 그 밖의 비산염의 제조 ; 그리고 식물 인쇄에 사용한다.
- (7) **비산칼륨**(potassium arsenate) : 일염기성과 이염기성 오르토비산칼륨은 비산나트륨과 동일방법으로 제조되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방부제나 살충제 ; 유연제 ; 식물인쇄 등에 사용한다.

- (8) **비산칼슘(calcium arsenate)** : 이오르토비산삼칼슘($\text{Ca}_3(\text{AsO}_4)_2$)은 때로는 불순물로서 그 밖의 비산칼슘을 함유하고 있다. 염화칼슘과 비산나트륨을 상호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살충제로서 농업에 사용한다.
- (9) **비산구리** : 비산제이구리($\text{Cu}_3(\text{AsO}_4)_2$)는 비산나트륨과 황산구리(또는 염화구리)를 반응시켜 얻으며 녹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포도 재배(살충제)·오염방지 도료에 사용한다.
- (10) **비산납** : 이오르토비산삼납($\text{Pb}_3(\text{AsO}_4)_2$)과 산성오르토비산염. 물에만 약간 녹으며 백색 가루·페이스트(paste) 모양이나 에멀전(emulsion) 상태이다. 살충제 제조에 사용한다.
- (11) **그 밖의 비산염** : 알루미늄(살충제)이나 코발트(핑크색 가루로 요업에 사용한다)의 비산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천연의 비산니켈[예: 아나버자이트(annabergite) 등](제2530호)
- (b) 비소화물(제2853호)
- (c) 아세트아비산염(제29류)

(C) **셀렌산의 염** : 셀렌화물·아셀렌산염·셀렌산염. 다음을 포함한다.

- (1) **셀렌화카드뮴(cadmium selenide)** : 내광택(anti-glare) 유리와 안료(顔料)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아셀렌산나트륨(sodium selenite)** : 유리에 적색 색조를 주고, 유리의 녹색 색조를 감추는데 사용한다.
- (3) **셀렌산암모늄(ammonium selenate)과 셀렌산나트륨(sodium selenate)** : 살충제에 사용하고 ; 또한 나트륨염은 의약에 사용한다.
- (4) **셀렌산칼륨(potassium selenate)** : 사진에 사용한다.

천연의 셀렌화구리납[조르자이트(zorgite)]은 제외한다(제2530호).

(D) **텔루르산의 염** : 텔루르화물·아텔루르산염·텔루르산염.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텔루르화 비스무트** : 열전대(thermopile)의 반도체에 사용한다.
- (2) **텔루르산나트륨과 칼륨** : 의약에 사용한다.

(II) 겹염(double salt)과 착염(complex salt)

이 류에는 겹염이나 착염을 분류하는데 다른 호에 명백히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주된 겹염이나 착염은 다음과 같다.

(A) **염소의 겹염이나 착염(클로로염)**

(1) **염소의 암모늄화합물**

- (a) **염화 마그네슘 암모늄** : 조해성(潮解性) 결정으로 ; 용접에 사용한다.

- (b) **염화제일철 암모늄과 염화제이철암모늄** : 덩어리나 흡습성 결정으로 ; 도금과 의 약에 사용한다.
- (c) **염화니켈암모늄** : 황색 가루나 수화물은 녹색 결정이다. 매염제(mordant)와 아연도 금에 사용한다.
- (d) **염화구리암모늄** : 청색이나 녹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착색제와 불꽃에 사용한다.
- (e) **염화아연암모늄** : 백색 결정성 가루로 물에 녹는다. 용접(“soldering salt”)· 건 전지·도금(전기아연도금) 등에 쓰인다.
- (f) **염화석산암모늄** : 백색이나 핑크색 결정이거나 수용액(水溶液)이다. 때로는 “**핑크 쉐트(pink salt)**”라 불리며 ; 염색과 견(silk)의 사이징(sizing)에 사용한다.
- (2) **염화알루미늄나트륨** : 백색 결정성 가루로 흡습성이 있고 유연제에 사용한다.
- (3) **염화마그네슘 칼슘** : 백색 조해성(潮解性) 결정으로 종이·직물·감자 전분이나 페인트 공업에 사용한다.
- (4) **염소염(예: 염화브롬화물·염화요드화물·염화요드산염·염화인산염·염화크로뮴과 염화바나듐산염)**

여기에는 **염화크로뮴산칼륨 [펠리고트의 염(Peligot's salt)]**이 포함되며 적색 결정으로 물에 분해되며 산화제로서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녹연광(pyromorphite : 연의 인산염과 염화물의 겹염)과 갈연광(vanadinite : 납의 바나듐산염과 염화물의 겹염)은 **제외하며** 천연의 금속광이므로 각각 **제2607호**와 **제2615호**에 분류한다.

(B) **요드화물의 겹염이나 착염(요드화염)**

- (1) **요드화나트륨비스무트** : 적색 결정으로 물에 분해되며 의약에 사용한다.
- (2) **요드화칼륨카드뮴** : 백색 조해성(潮解性) 가루로 공기에 노출하면 노랗게 변한다. 또한 의약에 사용한다.

(C) **황을 함유하는 겹염이나 착염**

(1) **암모늄의 황산염**

- (a) **황산제일철암모늄**($\text{FeSO}_4 \cdot (\text{NH}_4)_2\text{SO}_4 \cdot 6\text{H}_2\text{O}$) : 옅은 녹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야금(冶金)과 의약에 사용한다.
- (b) **황산제일코발트암모늄**($\text{CoSO}_4 \cdot (\text{NH}_4)_2\text{SO}_4 \cdot 6\text{H}_2\text{O}$) : 적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코발트광금과 요업에 사용한다.
- (c) **황산니켈암모늄**($\text{NiSO}_4 \cdot (\text{NH}_4)_2\text{SO}_4 \cdot 6\text{H}_2\text{O}$) : 녹색 결정으로 열에 분해되며 ; 물에 잘 녹는다. 주로 전해 니켈도금에 사용한다.
- (d) **황산구리암모늄** : 청색 결정성 가루로 물에 녹으며 대기 중에서 풍해(風解)한다. 구충제·직물 인쇄와 가공·아비산구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황산 지르코늄나트륨** : 백색 고체로 아연 야금(冶金)에 사용한다.
- (3) **티오염과 황을 함유하는 접염이나 착염(예: 황산셀렌화물과 셀렌황산염 · 티오텔루르산염 · 티오비산염 · 티오아비산염과 황산비소화물 · 티오탐산염 · 황산게르마늄화합물 · 티오안티몬산염 · 티오플리브덴산염 · 티오석산염 · 라이네크산염 등)**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a) **트리티오탐산칼륨** : 황색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농업(포도 해충제거)과 화학분석에 사용한다.
- (b) **알칼리성 티오플리브덴산염** : 금속 인산염처리 배스(과커라이징 배스)에 가황제로 사용한다.
- (c) **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로뮴산 암모늄**($\text{NH}_4[\text{Cr}(\text{NH}_3)_2(\text{SCN})_4]\text{H}_2\text{O}$) : 결정성 가루나 암적색 결정이다. 시약(reagent)으로 사용한다.
- (d) **티오시안산칼륨제일철과 티오시안산칼륨제이철**

회코발트광(cobaltite : 코발트의 황화물과 비소화물의 접염)과 게르마늄 광(germanite : 황산게르마늄 구리)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천연의 광(鑛 : ore)이므로 각각 제2605호와 제2617호에 분류한다.

(D) **셀렌(selenium)의 접염이나 착염** : 셀렌탄산염 · 셀렌시안산염 등

(E) **텔루르(tellurium)의 접염이나 착염** : 텔루르탄산염 · 텔루르시안산염 등

(F) **코발트아질산염(니트로코발트산염)**

아질산코발트칼륨($\text{K}_3\text{Co}(\text{NO}_2)_6$)[피셔의 **엘로우(Fischer's yellow)**]. 미세 결정성 가루이며 물에 매우 잘 녹는다. 단일이나 혼합하여 안료(顔料)로 사용하며 **코발트 엘로우(cobalt yellow)**로 칭한다.

(G) **질산염의 접염이나 착염(테트라와 헥사-아미노니켈 질산염)**

암모니아성 질산 니켈 : 청색이나 녹색 수용성 결정으로 산화제와 순니켈 촉매의 제조에 사용한다.

(H) **인산염의 접염이나 착염**

- (1) **오르토인산나트륨암모늄**($\text{NaNH}_4\text{HPO}_4\text{H}_2\text{O}$)[인염(磷鹽 : microcosmic salt)] : 무색 풍해성(風解性)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금속산화물을 녹이는데 용제(融劑 : flux)로 사용한다.
- (2) **오르토인산마그네슘암모늄** : 백색 가루로 물에 거의 녹지 않으며 직물 내화(耐火)와 의약에 사용한다.
- (3) **인(phosphorus)을 함유하는 착염(예: 플리브도인산염 · 실리코인산염 · 텅스토인산염 · 스타노인산염)**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플리브도인산염** : 현미경의 연구에 사용한다.
- (b) **실리코인산염과 스타노인산염** : 견(silk) 사이징(sizing)제에 사용한다.

(IJ) 텅스토붕소염(tungstoborate)

붕소텅스텐산카드뮴(cadmium borotungstate) : 황색 결정이나 수용액(水溶液)으로 비중에 의한 광물 분류에 사용한다.

(K) 시안산염의 접염과 착염

(L) 규산염의 접염이나 착염

이 그룹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를 포함한다.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유리공업과 절연체·이온 교환체·촉매·분자 여과기 등에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일반식 $M_{2/n}O \cdot Al_2O_3 \cdot ySiO_2 \cdot wH_2O$ [M은 n가(價)의 양이온(일반적으로 나트륨·칼륨·마그네슘이나 칼슘)을, y는 2 이상을, w는 물 분자 수를 의미한다]로 표시되는 합성 제올라이트(synthetic zeolite)를 포함한다.

그러나 점결제(binder)(예: 실리카계의 점토를 함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제외한다(제3824호)**. 입자 크기로 점결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5미크론 이상).

(M) 금속산화물의 접염이나 착염

크로뮴산칼륨칼슘(calcium potassium chromate)과 같은 염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플루오르착염(제2826호)
- (b) 명반(제2833호)
- (c) 시안착염(제2837호)
- (d) 히드라조산의 염(제2850호)
- (e) 수은을 함유한 암모늄염화물(암모늄수은염화물이나 암모늄염화수은염)과 요드화 수은구리(제2852호)
- (f) 황산마그네슘 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1류)

제6절

기 타

(제2801호 - 제2853호)

28.43 -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10 - 콜로이드 귀금속

- 은 화합물

2843.21 -- 질산은

2843.29 -- 기타

2843.30 - 금 화합물

2843.90 -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A) 콜로이드 귀금속

제71류[즉, 은·금·백금·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과 루테튬(ruthenium)]에 열거한 귀금속이 콜로이드 현탁액(suspension)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귀금속은 분산이나 음극 가루화하거나 무기염을 환원하여 얻는다.

콜로이드 은 : 금속 광택을 가진 소립(小粒 : small grain)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청색·갈색·녹회색이며 방부제로서 의약에 사용한다.

콜로이드 금 : 적색·자색·청색·녹색으로 콜로이드 은과 동일 용도로 사용한다.

콜로이드 백금 : 회색의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서 현저한 촉매 성질이 있다.

이들 콜로이드금속(예: 금)은 보호 콜로이드[예: 젤라틴·카세인(casein)·어교(魚膠 : fish glue)]를 함유하는 콜로이드 용액으로 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한다.

(B)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귀금속의 산화물·과산화물과 수산화물** : 제4절의 화합물과 유사하다.

(II) **귀금속의 무기염** : 제5절의 화합물과 유사하다.

(III) **인화물(phosphide)·탄화물(carbide)·수소화물(hydride)·질화물(nitride)·규화물(silicide)과 붕화물(boride)** : 제 2849 호, 제 2850 호와 제 2853 호의 화합물(인화백금·수소화팔라듐·질화은·규화백금)과 유사하다.

(IV) **귀금속의 유기화합물** : 제29류의 화합물과 유사하다.

귀금속과 그 밖의 금속[예: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과 귀금속의 겹염(double salt)과 귀금속을 함유하는 착에스테르(complex ester)]를 **둘 다** 함유하는 화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각 귀금속의 보통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1) **은 화합물(silver compound)**

(a) **산화은(silver oxide)** : 산화제이은(Ag_2O)은 갈색을 띤 흑색 가루로 물에 약간 녹으며 빛에 노출하면 검게 변한다.

산화제일은(AgO)은 회흑색 가루이다.

산화은은 특히 배터리 제조에 사용한다.

(b) **할로겐화은(silver halide)** : 염화은(AgCl)은 백색 덩어리나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빛에 노출하면 검게 변한다. 불투명한 흑색 용기에 포장한다. 사진·요업의 제조·의약과 은도금에 사용한다.

각은광[세라지라이트(cerargyrite)나 혼 실버(horn silver)](천연의 염화은과 요드화은)은 **제외한다** (제2616호).

브롬화은(황색)·요드화은(황색)과 플루오르화은은 염화은과 유사한 목적에 사용한다.

(c) **황화은(silver sulphide)** : 인조 황화은(Ag_2S)은 강한 회흑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유리제조에 사용한다.

천연의 황화은(회은광: argentite)·천연의 은과 안티모니의 황화물[농홍은광(pyrrargyrite)·황안은광(stephanite)·회안구리은광(polybasite)]·천연의 은과 비소의 황화물(담홍은광: proustite)은 **제외한다** (제2616호).

(d) **질산은(AgNO_3)** : 백색 결정으로 물에 녹고 독성이 있으며 피부를 상하게 한다. 유리나 금속의 도금; 견(silk)이나 뿔(horn)의 염색; 사진; 지울 수 없는 잉크의 제조; 방부제나 구충제에 사용한다. 때로는 “루나 코스틱(lunar caustic)”이라 하며 “루나 코스틱(lunar caustic)”은 질산나트륨이나 질산칼륨이 소량 용융(熔融: fused)된 질산은과 때로 소량의 염산은이 용융(熔融: fused)되어 **제30류**의 소작제(cauteriser)를 만드는 질산은에도 적용하는 명칭이다.

(e) **그 밖의 염과 무기화합물**

황산은(Ag_2SO_4) : 결정이다.

인산은(Ag_3PO_4) : 황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의약과 사진과 광학용으로 사용한다.

시아나화은(AgCN) : 백색 가루로 빛에 노출되면 흑색으로 변하고 물에 녹지 않는다.; 의약과 은도금에 사용한다. 티오시아나산은(AgSCN)은 시아나화은과 유사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사진의 증감제에 사용한다.

은과 칼륨의 시안산 착염($\text{KAg}(\text{CN})_2$)이나 은과 나트륨의 시안산 착염($\text{NaAg}(\text{CN})_2$)은 녹으며 백색의 염이고 전기도금에 사용한다.

뇌은(silver fulminate) : 백색 결정으로 작은 충격으로도 폭발되므로 다루는데 위험하며 ; 뇌관 제조에 사용한다.

중크로뮴산은($Ag_2Cr_2O_7$) : 결정성 루비-적색 가루로 물에 약간 녹으며 ; 미세 화공(painting miniature)(은적·자적)에 사용한다.

과망간산은 : 짙은 자색 투명한 가루로 물에 녹으며 가스마스크에 사용한다.
아지화은 : 폭약이다.

(f) **유기화합물** : 이들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 (i) 유산은(백색 가루)과 시트르은(silver citrate)(황색 가루) ; 사진·방부제에 사용한다.
- (ii) 옥살산은 : 가열하면 분해하여 폭발한다.
- (iii) 초산은·벤조산은·부틸산은·계피산은·피크르산은·살리실산은·타르타르산은과 발레르산은
- (iv) 은의 프로테이네이트(proteinat)·뉴클리에이트(nucleate)·뉴클레이네이트(nucleinat)·알부미네이트(albuminat)·펩토네이트(peptonat)·비텔리네이트(vitellinat)와 탄네이트(tannat)

(2) 금 화합물(gold compound)

(a) **금산화물(oxide)** : 산화제일금(Au_2O) :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암자색 가루이다 ; 산화제이금(Au_2O_3)은 갈색 가루이며 대응하는 산은 수산화 제이금이나 제이금 산($Au(OH)_3$)이며 흑색의 물질로 빛에 노출하면 분해하여 알칼리금염으로 된다.

(b) **금염화물(chloride)** : 염화제일금($AuCl$)은 황색이나 적색 결정성 가루이다. 삼염화금($AuCl_3$)은 적갈색 가루이거나 결정성 덩어리로 흡습성이 강하며 밀폐한 플라스크(flask)나 튜브(tube)에 보존한다. 사염화금(III)산($AuCl_3HCl \cdot 4H_2O$)은 황색 결정의 수화물이고 염화금산의 알칼리염은 적황 결정으로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사진[조색욕(toning bath)의 준비]·요업이나 유리공업·의약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카시어스 퍼플(purple of Cassius) 즉, 수산화석과 콜로이드금의 혼합물(제32류)은 제외하며 ; 이는 페인트나 바니시의 제조와 특히 자기용 착염제에 사용한다.

(c) **그 밖의 화합물** : 황화금(Au_2S_3) : 흑색 물질로서 알칼리 황화물과 결합하여 티오금산염을 형성한다.

금·나트륨의 아황산 겐염($NaAu(SO_3)$)과 금·암모늄의 아황산 겐염($NH_4Au(SO_3)$)은 무색 용액으로 판매되고 전기도금에 사용한다.

금티오황산나트륨은 의약에 사용한다.

시안화금($AuCN$)은 가열하면 분해되는 결정 모양의 노란색 가루로서 전기 도금과 의약품에 사용한다. 시안화 알칼리와 반응하면 금사시안산칼륨($KAu(CN)_4$)과 같은 시안화금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전기 도금용에 사용하는 용해성의 백색염이다.

금티오시안염나트륨은 오렌지색 바늘 모양 결정으로서 의약과 사진(색조절용)에 사용한다.

(3) **루테늄화합물(ruthenium compound)** : 이산화루테늄(RuO_2)은 청색이며 사산화루테늄(RuO_4)은 오렌지색이다. 삼염화루테늄(RuCl_3)과 사염화루테늄(RuCl_4)은 알칼리 염화물·아미노(ammino)나 니트로소착염과 작용하여 겹염화물을 생성한다. 또한 루테늄이나 알칼리 금속의 아질산 겹염이 있다.

(4) **로듐화합물(rhodium compound)** : 수산화로듐($\text{Rh}(\text{OH})_3$)은 산화로듐(Rh_2O_3)에 상당하는 것으로 흑색 가루이다. 삼염화로듐(RhCl_3)은 염화알칼리와 반응하여 클로로아로듐산염을 생성한다. 또한 황산착염이나 인산염·질산염·아질산착염·시아노아로듐산염·아미노착염이나 옥살산유도체 등이 있다.

(5) **팔라듐화합물(palladium compound)**: 가장 안정한 산화물은 단 하나뿐인 염기인 산화제일팔라듐(PdO)이며 열에 분해되는 흑색 가루이다.

염화제일팔라듐(PdCl_2)은 갈색 조해성(潮解性) 가루로 물에 녹아 이분자의 물($2\text{H}_2\text{O}$)로 결정화된다. 요업·사진과 전기도금에 사용한다.

클로로제일 팔라듐산칼륨(K_2PdCl_4)은 갈색 염으로 물에 꽤 잘 녹으며 일산화탄소의 검출에 사용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클로로팔라듐산염·아미노화합물·티오파라듐산염·팔라듐아질산염·시아노아팔라듐산염·팔라듐옥살산염과 황산제일팔라듐이 있다.

(6) **오스뮴화합물(osmium compound)** : 이산화오스뮴(OsO_2)은 암갈색 가루이다. 사산화 오스뮴(OsO_4)은 휘발성의 고체로 백색 바늘 모양 결정이며 ; 눈(眼)과 폐를 상하게 하며 ; 생물조직학과 현미경 검사에 사용한다. 사산화 오스뮴은 수산화알칼리와 암모니아를 작용 처리하여 오스뮴산칼륨(적색 결정)을 생성하며 황색 결정인 나트륨이나 칼륨의 오스뮴산염을 생성한다.

사염화오스뮴(OsCl_4)과 삼염화오스뮴(OsCl_3)은 알칼리클로로오스뮴산염과 클로로아오스뮴산염을 생성한다.

(7) **이리듐화합물(iridium compound)** : 산화이리듐·사수산화이리듐 $[\text{Ir}(\text{OH})_4$: 청색의 고체]·염화이리듐·클로로이리듐산염·클로로아이리듐산염·황산겹염과 아미노화합물이 있다.

(8) **백금화합물(platinum compound)**

(a) **산화물(oxide)** : 산화제일백금(PtO)은 자색이나 흑색 가루이다. 산화제이백금(PtO_2)은 수개의 수화물 즉, 사수화물($\text{H}_2\text{Pt}(\text{OH})_6$)은 헥사 히드록시백금산 알칼리에 상당하는 착산(complex acid)이다. 또한 아미노착염에 상당하는 것이 있다.

(b) **그 밖의 화합물** : 염화제이백금(PtCl_4)은 갈색 가루이나 황색 용액으로 존재하며 시약에 사용한다. 상거래 관습상의 염화백금(염화제이백금산· H_2PtCl_6)은 조해성(潮解性)의 프리즘상이고 갈적색으로 물에 녹는다. 사진(백금색)·백금 도금·요업유약·백금 해면(platinum sponge) 제조에 사용하여 백금아미노착염에 상당하는 것이 있다.

또한 염화제일백금산(H_2PtCl_4)에 상당하는 아미노착염이 있는데 이는 적색 고체이다. 칼륨이나 바륨의 시아노아백금산염은 방사선 사진술의 형광 스크린의 제조에 사용한다.

(C)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귀금속과 수은의 합금으로 보통 금이나 은의 아말감(amalgam)은 귀금속을 얻은 중간체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귀금속과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예: 특정 아말감(amalgam)은 치과에 사용한다]을 **둘 다** 함유하는 아말감은 포함되나 ; **전부** 비금속(卑金屬)으로 된 아말감은 **제외한다(제2853호)**.

아말감을 제외한 수은 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제2852호)**.

28.44 -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 2844.10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844.2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844.3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소호 제2844.10호 · 제2844.20호 · 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다),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 2844.41 --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844.42 -- 악티늄-225 · 악티늄-227 · 캘리포늄-253 · 퀴륨-240 · 퀴륨-241 · 퀴륨-242 · 퀴륨-243 · 퀴륨-244 · 아인슈타이늄-253 · 아인슈타이늄-254 · 가돌리늄-148 · 폴로늄-208 · 폴로늄-209 · 폴로늄-210 · 라듐-223 · 우라늄-230 · 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844.43 -- 그 밖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844.44 -- 방사성 잔재물
- 2844.5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I) 동위원소(isotope)

원소의 핵은 원자의 수(원자번호)를 내포하고 있고 원자의 수는 항상 양성자의 수와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를 수가 있다.

원자번호는 동일하나 질량수가 다른 원자핵종을 원소의 동위원소(isotope)라 한다. 예로서 원자번호가 92인 우라늄은 질량수가 227에서 240까지의 여러 핵종이 있는 데 ; 이들을 우라늄 233 · 우라늄235 · 우라늄238 등으로 부른다. 또 한 예로 수소 1 · 수소 2나 중수소(제2845호에 분류)와 수소 3이나 삼중수소를 수소의 동위원소라 한다.

원소의 화학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핵의 양전하량(양성자의 수)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화학적 성질에 미치는 외각전자의 수를 결정한다.

따라서 한 원소의 다른 동위원소는 핵전하는 동일하나 핵의 질량이 다르며,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동위원소에 따라 다르다.

원소들은 단핵종이나 2 이상의 동위원소가 일정비율로 혼합된 것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천연 염소는 유리와 결합된 상태에서 항상 원자번호 35의 염소가 75.4%와 원자번호 37의 염소가 24.6%로 혼합되어 있다(염소의 원자량은 35.457).

한 원소가 동위원소의 혼합물로 구성되었을 때 그의 조성부분은 다공질(多孔質)의 관(tube)을 통한 확산작용·전자력 분리나 전기분해 분별법에 의하여 분리할 수 있다. 또한 동위원소는 천연원소를 중성자나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하전립자로 충돌하여 얻을 수 있다.

이 류의 주 제6호와 제2844호·제2845호에 있어서 **동위원소(isotope)**란 순수 상태의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천연 동위원소의 조성을 수 개의 동위원소로 농축(또는 열화)하거나 핵반응을 통하여 수 개의 동위원소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거나 인위적으로 변성한 원소·인공동위원소가 포함한다. 예로서 85%의 염소 35를 농축(또한 15%의 염소 37을 열화)하여 얻는 원자량 35.30인 염소는 동위원소로 간주한다.

단핵종으로 천연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예: 베릴륨 9·플루오르 19·알루미늄 27·인 31·망간 55 등)는 동위원소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리나 결합된 것은 경우에 따라 화학 원소나 그들의 화합물에 관계되는 열거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 동위원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예: 베릴륨 10·플루오르 18·알루미늄 29·인 32·망간 54)는 동위원소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번호가 92보다 크거나 초우라늄원소와 같은 인공적 원소는 고정된 동위원소성의 조성을 가지지 않고 원소를 얻는 방법에 따라 변화하므로 원소와 주 제6호에서의 동위원소간의 구별은 불가하다.

이 호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방사성**의 현상을 가지는 동위원소만을 분류하고 ; 다시 말해서 안정한 동위원소는 **제2845호**에 분류한다.

(II) 방사성(radioactivity)

특정 핵종가운데 핵이 불안정한 것은 순수 상태나 화합물 모양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물리적 효과나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복합방사선을 방출한다.

- (1) 기체의 이온화
- (2) 형광의 발생
- (3) 사진 건판의 흐림

이러한 효과는 방사선을 발견하고 가이거-물러(Geiger-Müller) 계수관 · 비레 계수관 · 전리상(電離箱 : ionisation chamber) · 윌슨 무상(霧箱 : Wilson chamber) · 포상(泡箱 : bubble flow counter) · 신틸레이션(scintillation) 검출기 · 감광성의 필름이나 건판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방사성(radioactivity)** 현상이고 ; 일반적으로 그 현상을 나타내는 원소 · 동위원소 · 화합물 등을 **방사성이 있다(radioactive)**고 말한다.

(Ⅲ)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유물

(A) 방사성원소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6호 가목에서 설명된 방사성원소를 분류한다 : 테크네튬 · 프로메튬 · 폴로늄과 원자 번호가 큰 모든 원소(예: 아스타틴 · 라돈 · 프란슘 · 라듐 · 악티늄 · 토륨 · 프로트악티늄 · 우라늄 · 넵투늄 · 플루토늄 · 아메리슘 · 퀴륨 · 버클륨 · 캘리포늄 · 아인슈타이늄 · 페르븀 · 멘델레븀 · 노벨륨 · 로렌슘)

이들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 반면에 **제2805호**에 해당하는 칼륨 · 루비듐(rubidium) · 사마륨(samarium)과 루테튬(lutetium)과 같은 원소는 안정하고 방사성이 있는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방사성동위원소는 약간의 방사성이 있고 비교적 저율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하여 이 호에서 제외한다.

반면 이상에서 말한 칼륨 · 루비듐 · 사마륨 · 루테튬과 같은 원소들이 각각 칼륨40(K40) · 루비듐87(Rb87) · 사마륨147(Sm147) · 루테튬176(Lu176)으로 농축한 것이면 이 호의 방사성동위원소로 간주한다.

(B) 방사성동위원소

천연 방사성동위원소에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칼륨40 · 루비듐87 · 사마륨147과 루테튬176, 아래(IV)절의 여러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라늄235(U235) · 우라늄(U238)과 탈륨 · 납 · 비스무트 · 폴로늄 · 라듐 · 악티늄이나 토륨의 특정 방사성동위원소도 포함한다. 이 방사성동위원소는 대응하는 원소와 이름이 다르게 알려져 있다. 이 이름은 방사성으로 전환해서 얻어진 원소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즉, 비스무트210(Bi210)은 라듐E로, 폴로늄212는 토륨C'로, 악티늄228은 메소토륨II라고 칭한다.

보통 안정한 원소라도 입자가속기[시클로트론(cyclotron) · 싱크로트론(synchrotron) 등]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높은 에너지의 입자(양자 · 중양자)를 충돌하거나 원자로 중에서 중성자를 흡수한 후에 방사성이 된다.

이와 같이 얻은 원소를 인조 방사성동위원소라 칭하는데 현재 약 500종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200여종은 이미 실제 이용되고 있다. 우라늄233과 플루토늄 동위원소는 나중에 별도로 언급하고 중요한 방사성동위원소는 다음과 같다. 즉, 수소3 · 탄소14 · 나트륨24 · 인32 · 황35 · 칼륨42 · 칼슘45 · 크로뮴51 · 철59 · 코발트60 · 크립톤85 · 스트론튬90 · 이트륨90 · 팔라듐109 · 요드131과 132 · 크세논133 · 세슘137 · 틀륨170 · 이리듐192 · 금198과 폴로늄210 등이다.

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는 자연적으로 더 안정한 원소나 동위원소로 변한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최초 존재량이 반감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반감기(half-life)나 방사성 동위원소의 전이(轉移 : transformation) 비율이라 한다. 반감기는 100만분의 1 초로 짧은 것(토륨C' : 0.3×10^{-6} 초)이 있는가 하면 10억년 이상의 긴 것(사마륨147 : 1.5×10^{11} 년)도 있다. 그것은 통계학상으로 핵의 불안전성에 대한 비교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는 방사성 화합물이나 비방사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이 호에 분류 되는데(예: 미처리의 방사표적·방사성원), 비방사능이 그램당 74베크렐 (Bq/g)[그램당 0.002마이크로퀴리($\mu\text{Ci/g}$)]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 방사성 화합물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과 잔유물

이 호의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는 레이블을 붙인 화합물이나 물품의 형태로 사용한다 (예: 분자 중에 방사성의 원자를 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 이 같은 화합물은 그 밖의 방사성이나 비방사성 물질에 용해·분산이나 자연적으로 혼합되거나 인위적으로 혼합된 것이 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같은 원소와 동위원소는 합금·분산이나 서멧(cermet)형 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화학적으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하는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과 이들의 용액의 것으로서 비방사능이 그램당 74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 퀴리) 이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 그에 반하여 방사성 물질(원소·동위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합금·분산물(分散物 : dispersion)[서멧(cermet)을 포함] 오염제품과 혼합물의 경우 비 방사능이 그램당 74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퀴리)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호에 분류한다.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는 그 단독으로는 드물게 사용하고 상거래 관습상의 화합물 이나 합금에 이용한다. 특성과 중요성에 따라 다음(IV)에 설명된 핵분열성(fissile)의 화합물 과 연료친(親)핵(fertile)원소나 동위원소의 화합물을 제외하고 중요한 방사성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1) **라듐염(radium salt)(염화물·브롬화물·황산염 등)** : 이는 암치료나 물리적인 실험 에서 방사원으로 사용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 앞에서 설명한 (III)(B) 참조

인공방사성 동위원소와 그들의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a) **공업용의 방사선 사진** : 예시하며 금속·판과 시트 등의 두께측정 ;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용기에 들어 있는 액체의 액면측정 ; 가황(加黃 : vulcanisation)의 촉진 ; 유기화 합물의 그래프팅(grafting)이나 중합개시(trigger off polymerisation) ; 광택 페인트의 제조(예: 황화아연을 혼합) ; 시계와 계기의 문자판 제조

(b) **의약품용** : 예를 들면, 특정 질병의 치료와 진단용(코발트60·요드131·금198·인32 등)

(c) **농업용** : 예를 들면, 농산물의 살균 ; 발아억제 ; 식물에 관한 비료의 효용이나 흡수성 연구 ; 품종 개량 등(코발트60 · 세슘137 · 인32 등)

(d) **생물학용** :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의 기관 개량이나 기능의 연구(트리튬 · 탄소14 · 나트륨24 · 인32 · 황35 · 칼륨42 · 칼슘45 · 철59 · 스트론튬90 · 요드131 등)

(e) **물리학이나 화학의 연구**

방사성동위원소와 이의 화합물은 보통 가루 · 용액 · 바늘 모양 · 실(thread) 모양이나 시트 모양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들은 유리 앰플 · 중공의 백금 바늘 모양 용기 · 스테인리스 강관 등에 넣는데 동위원소의 방사능 정도에 따라 두께가 다르나 항(抗)방사능(anti-radiation) 금속의 외용기(보통 납)에 포장한다. 특정 국제협정에 따라 그의 용기에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징 · 방사성의 정도를 명시한 레이블을 붙여야 한다.

혼합물은 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라듐 · 라돈 · 안티모니124 · 아메리슘241 등)가 다른 원소 [베릴륨(beryllium) · 플루오르(fluorine) 등]와 연합(혼합물 · 합금 · 조합물 등)하여 생성되는 특정 중성자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γ, n)이나 (α, n) 반응(γ -광자이나 α -입자와 중성자 방출의 도래)을 일으킨다.

그러나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도록 원자로에 도입될 준비를 갖추고 집합된 모든 중성자원(中性子源 : neutron source)은 원자로 구성요소로 보아 **제8401호**에 분류한다.

탄소나 탄화규소로 도포하여 구(球)형이나 프리즘형의 연료원소로 도입하기 위한 극미 구형의 핵연료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자기형광을 발하도록 방사성 물질을 소량 첨가하여 루미노퍼(luminophore)로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하는데 이때 비방사능이 그램당 74벵크렐(Bq/g)[그램당 0.002 마이크로 퀴리($\mu\text{Ci/g}$)]을 초과하여야 한다.

방사성 잔유물로서 재이용(再利用)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조사(照射 : irradiated)했거나 삼중수소로 된 중수(重水 : heavy water)** : 원자로에서 머무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중수(重水) 중의 일부 이중수소는 중성자를 흡수하여 삼중수소로 되어 중수(重水)가 방사성이 된다.

(2) **사용한 카트리지(cartridge)** : 일반적으로 고도의 방사성의 것으로서 하기(IV)항에서 포함하고 있는 핵분열성과 연료친(親)핵물질을 재생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IV) 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A) 핵분열성(fissile)이나 연료핵친원소(fertile chemical element)와 동위원소(isotope)

(III)에서 말한 특정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는 고원자 질량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토륨·우라늄·플루토늄·아메리슘 등의 원자핵은 특별히 복합 구조로 되어 있다. 이들 핵들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중성자·양자·이중양자·삼중양자·알파입자 등)의 작용을 받게 되면 이들 작은 입자가 인정한 질량을 가진 중간 중량의 두 원자핵(또는 더 드물게는 세 개나 네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다. 이 붕괴에서는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동시에 이차중성자를 생성한다. 이 같은 공정은 핵분열(fission)이나 핵이열(nuclear bipartition) 공정으로 칭하고 있다.

핵분열은 자발적으로나 광자의 작용으로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핵분열할 때 방출하는 이차중성자는 이차핵분열을 일으켜 이차중성자를 계속 생기게 한다. 이 같은 공정의 반복을 연쇄반응이라 한다.

특정 원소핵(우라늄 233·우라늄 235·플루토늄 239)에서는 중성자의 평균 속도가 약 초속 2,200m/sec[또는 1/40 에너지 전자볼트(eV)]의 감속 중성자로 사용하면 핵분열성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아진다. 이 속도는 액체의 분자(열화운동)의 속도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 중성자는 열중성자(thermal neutron)라 칭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열중성자에 의한 핵분열(fission)은 대부분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핵분열(fissile)이란 보통 열중성자 특히 우라늄 233·우라늄 235·플루토늄 239와 이들 특히 우라늄·플루토늄을 함유하는 원소에 의하여 동위원소가 핵분열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우라늄 238·토륨 232와 같은 그 밖의 핵종들은 오로지 고속 중성자에 의하여 직접 핵분열을 받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핵분열이라 하지 않고 핵연료(fertile)라 한다. “퍼틸러티(fertility)”는 이들 핵종이 감속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각각 핵분열성이 있는 플루토늄 239와 우라늄 233을 형성한다.

열원자로에서(감속중성자로서) 핵분열에 의하여 방출되는 이차중성자의 에너지는 높기 때문에(약 200만 전자볼트) 이들 중성자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면 감속시켜야 한다. 이 같은 목적은 감속제(moderator) 즉 저원자량인 물품[물·중수(重水)·특정 탄화수소·흑연·베릴륨(beryllium) 등]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이 감속제는 충격의 연속으로 중성자의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지만 중성자 자체는 흡수하지 않으며 흡수한다 하더라도 무시할 정도이다.

연쇄반응의 개시와 유지를 위해서는 핵분열에 의해서 생성된 이차 중성자의 평균 수는 핵분열을 선도하지 않고 도주하여 포획현상에 의하여 잃어버린 중성자보다 더 많이 보상하여야 한다.

핵분열성(fissile)과 연료핵친원소(fertile chemical element)는 다음과 같다.

(1) **천연 우라늄**

천연상태인 우라늄은 세 개의 동위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라늄 238은 총질량의 99.28% · 우라늄 235는 0.71% · 우라늄 234는 소량(약 0.006%)이다. 따라서 천연 우라늄은 핵분열성 원소(이유 : 우라늄 235 함유)와 연료핵친원소(fertile element)(이유 : 우라늄 238 함유)로 간주한다.

우라늄은 주로 우라늄광석(pitchblende · uraninite · autunite · brannerite · carnotite · torbernite)에서 추출한다. 또한 과인산염의 제조 잔재물이나 금광의 웨이스트(waste)와 같은 이차 원료에서 얻는다. 정상적인 공정으로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으로 사(四)플루오르화물의 환원이나 전해방법이 있다.

우라늄은 미소한 방사성 원소이며 매우 무겁고(비중 19) 단단하다. 은회색인 표면과 금속 광택을 갖고 있으며 공기 중에서 산소와 접촉하면 금속 광택을 잃고 산화물이 된다. 가루 상태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하여 급속히 발화한다.

금속 우라늄은 보통 잉곳(ingot) 형태로 시판되며 광택 · 파일링(filing) · 롤링 등(봉과 로드 · 튜브 · 판 · 선 등의 생산)에 사용한다.

(2) **토륨(thorium)**

토륨은 토륨석과 오랑가이트(orangite)에 충분히 함유되어 있으나 희귀한 광석이므로 주로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금속원소인 모나자이트(monazite)로부터 얻는다.

불순한 토륨 금속은 발화성이 지극히 큰 회색 가루이며, 플루오르화토륨을 전기분해하거나 플루오르화 토륨 · 염화토륨이나 산화 토륨을 환원하여 얻는다. 이 금속은 불활성 대기에서 정제되고 소결(燒結)되어 중강의 회색 잉곳(ingot)(비중 11.5)으로 전환하며 ; 잉곳(ingot)은 단단해서(우라늄보다는 연하다) 공기와 접촉하면 급속히 산화한다.

이들 잉곳(ingot)는 압연 · 압출이나 인발하면 시트 · 로드 · 튜브 · 선 등으로 된다. 천연 토륨은 본래부터 토륨의 동위원소인 토륨232로 이루어져 있다.

토륨과 특정 토륨합금은 주로 원자로에서 연료핵친물질(fertile material)로 사용하나, 토륨-마그네슘 합금과 토륨-텅스텐 합금은 항공기 공업이나 열이온장치의 제조에 사용한다.

제16부부터 제19부까지의 토륨으로 제조한 물품이나 그 부분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3) **플루토늄(plutonium)**

공업용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우라늄238을 조사화(照射化 : irradiating)하여 얻는다.

이는 매우 무겁고(비중 19.8) 방사성이 있고 독성이 크다. 외관과 산화 성향에 있어서는 우라늄과 유사하다.

상거래 관습상의 농축한 우라늄과 같은 형태로 포장되며 취급에 있어서는 가장 주의가 필요하다.

핵분열성(fissile) 동위원소는 다음과 같다.

- (1) **우라늄 233** : 원자로에서 토륨 232로부터 얻으며 이는 연속적으로 토륨 233·프로트 악티늄233과 우라늄 233으로 변형된다.
- (2) **우라늄 235** : 천연적으로 얻는 유일한 핵분열성 우라늄의 동위원소로서 천연의 우라늄에 0.71% 비율이 존재한다.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우라늄 235를 열화(劣化)한 우라늄(우라늄 238을 농축한 것)을 얻기 위하여 전자분리·원심분리나 가스 확산 공정에 의한 동위원소 분리에 육(六)플루오르화우라늄이 쓰인다.

- (3) **플루토늄 239** : 원자로에서 우라늄 238로부터 얻으며 우라늄 238은 연달아 변형되어 우라늄 239·넵투늄 239와 플루토늄 239가 된다.

또한 칼리포르늄 252·아메리슘 241·퀴륨 242와 퀴륨 244와 같은 트랜스플루토늄의 특정 동위원소는 핵분열을(자연적인 핵분열인지에 상관없다) 일으킬 수 있고 또 강렬한 중성자 원(source)으로 사용될 수 있다.

토륨 232는 별도로 하고, 연료핵친동위원소(fertile isotope)에 대해서는 열화(劣化)한 우라늄[즉, 우라늄 235에서 열화(劣化)되고 결과적으로 우라늄 238에서 농축된]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금속은 우라늄 235에서 농축된 우라늄을 제조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며, 값이 싸고 다량 사용이 가능하므로 천연 우라늄 대신으로 쓰인다. 특히 연료핵친물질(fertile material)로, 방사선에 대한 보호스크린으로, 플라이 휠 제조를 위한 중금속으로나 특정 가스의 정화를 위한 게터(getter)(전구나 진공관 안의 남은 가스를 흡수시키는 물질)의 제조에 사용한다.

우라늄235를 열화(劣化)시킨 우라늄으로 제조한 제16부부터 제19부의 물품이나 그 부분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핵분열성(fissile)과 연료핵친(fertile) 원소나 동위원소의 혼합물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화합물을 분류한다.

(1) 우라늄 화합물

- (a) 산화물 : UO_2 · U_3O_8 과 UO_3
- (b) 플루오르화물 : UF_4 와 UF_6 (UF_6 는 섭씨 56도에서 승화한다)
- (c) 탄화물 : UC와 UC_2
- (d) 우라늄산염 : $Na_2U_2O_7$ 과 $(NH_4)_2U_2O_7$
- (e) 질산우라닐 : $UO_2(NO_3)_2 \cdot 6H_2O$
- (f) 황산우라닐 : $UO_2SO_4 \cdot 3H_2O$

(2) **플루토늄 화합물**

- (a) 사플루오르화물 : PuF_4
- (b) 이산화물 : PuO_2
- (c) 질산염 : $\text{PuO}_2(\text{NO}_3)_2$
- (d) 탄화물 : PuC 와 Pu_2C_3
- (e) 질화물 : PuN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화합물은 주로 원자력 공업에서 중간체나 완제품으로서 사용한다. 육플루오르화우라늄(uranium hexafluoride)은 보통 밀폐한 용기에 제시하는데 독성이 있어 취급상에 주의를 요한다.

(3) **토륨 화합물**

- (a) 산화물과 수산화물 : 이산화토륨(ThO_2)[토리아(thoria)]은 백황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고, 수산화토륨($\text{Th}(\text{OH})_4$)은 토리아(thoria)의 수화물에서 얻으며 둘 모두 모나자이트로부터 얻는다. 가스 맨틀의 제조·내화(耐火)제품이나 촉매(아세톤 합성)로 사용한다. 산화물은 원자로에서 연료핵친물질(fertile material)로 사용한다.
- (b) 무기염 : 이들은 주로 백색 가루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i) 질산토륨 : 다소 수화 상태의 결정이거나 가루[하소(煨燒)한 질산염]이다. 형광 페인트의 제조에 사용하고 질산세륨과의 혼합물은 가스 맨틀을 포화하는데 사용하며 ;
 - (ii) 황산토륨 : 결정성 가루로서 냉수에 녹으며 ; 황산수소토륨과 황산알칼리겔염이 있다. ;
 - (iii) 염화토륨(ThCl_4) : 무수(無水)나 수화물이며 산화염화토륨이 있다. ;
 - (iv) 질화토륨과 탄화토륨 : 내화(耐火)제품·연마제나 원자로에서 연료핵친물질(fertile material)로서 사용한다.
- (c) 유기화합물 : 가장 잘 알려진 유기화합물은 포름산토륨·초산토륨·타르타르산토륨과 벤조산토륨이 있으며 모두 의약에 사용한다.

(C) **핵분열성(fissile)·연료핵친(fertile) 원소나 동위원소를 함유하는 합금·분산물(分散物 : dispersion)[서멧(cermet)을 포함한다]·요업제품·혼합물·잔유물과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이 그룹의 중요한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 (1)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알루미늄·크로뮴·지르코늄·몰리브덴·티탄·니오븀이나 바나듐과의 합금**. 또한 우라늄-플루토늄 합금과 페로-우라늄 합금
- (2) **이산화우라늄(UO_2)이나 탄화우라늄(UC)**(이산화토륨이나 탄화토륨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흑연이나 폴리에틸렌에 **분산시킨 물품**
- (3) 이산화우라늄(UO_2)·이산화플루토늄(PuO_2)·탄화우라늄(UC)이나 탄산플루토늄(PuC) (또는 산화토륨이나 탄화토륨을 혼합한 이들 혼합물)과 여러 금속(예: 스테인리스 스틸)들로 구성된 **서멧(cermet)**

봉·관·구·실(thread)·가루 등의 형태로 된 이들 물품은 연료원소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직접 원자력에 사용한다.

덮개에 포장되었거나 취급 목적으로 특별한 부착물이 부착된 봉·관·구 등은 **제8401호**에 분류한다.

- (4) 사용하였거나 조사(照射 : irradiated)된 연료원소[카트리지(cartridge)] : 즉 이들은 다소 사용한 후에는 갈아주어야 한다(핵분열 생성물의 축적이 연쇄반응을 방해하거나 카트리지(cartridge)의 외피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료원소(카트리지)는 냉각시키고 방사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단히 깊은 물에 충분히 저장한 후, 잔유 핵분열물질의 재생·전환에서 생긴 핵분열성 물질이나 연료핵친원소(fertile element)(이는 일반적으로 연료원소에 포함한다)와 핵분열성 생산품의 재생을 위하여 특별 장치를 비치한 납(鉛)의 용기에 넣는다.

**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 2845.20 - 붕소-10을 농축한 붕소와 그 화합물
- 2845.30 - 리튬-6을 농축한 리튬과 그 화합물
- 2845.40 - 헬륨-3
- 2845.90 - 기타

동위원소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2844호 설명(I) 참조

이 호에는 안정한 동위원소, 즉 비방사성 동위원소와 그들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 (1) **중수소(heavy hydrogen)나 듀테륨(deuterium)** : 보통의 수소에서 분리되는데 약 6,500분의 1을 포함한다.
- (2) **중수(重水 : heavy water)** : 산화 중수소이며 상수(常水 : ordinary water)에 약 6,500분의 1이 함유되어 있으며 물을 전기분해할 때 잔유물로서 얻어진다. 중수소의 제조 원료와 원자로의 감속재 등에 사용한다(우라늄 원자를 분해하는 중성자를 감속).
- (3) **중수소로 만든 그 밖의 화합물** : 예: 중아세틸렌(heavy acetylene) · 중메탄 · 중초산과 중 파라핀 왁스
- (4) 리튬6이나 리튬7로 알려진 **리튬의 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 (5) 탄소13으로 알려진 **탄소의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28.46 -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 유기 화합물

2846.10 - 세륨화합물

2846.90 - 기타

이 호에는 이트륨 · 스칸듐이나 제2805호의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 금속[란타넘(lanthanum) · 세륨(cerium) ·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 니오디뮴(neodymium) · 사마륨(samarium) · 유로퓸(europium) · 가돌리늄(gadolinium) · 테르븀(terbium) · 디스프로슘(dysprosium) · 홀뮴(holmium) · 에르븀(erbium) · 툴륨(thulium) · 이테르븀(ytterbium) · 루테튬(lutetium)]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을 분류한다. 또한 이들 원소들의 혼합물을 직접 화학처리를 하여 유도한 화합물과 이들 원소들의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의 혼합물과 동일 음이온 [예: 희토류(稀土類) 금속의 염화물]을 가지는 혼합물을 분류한다. 그러나 양이온이 동일하지는 상관없으나 다른 음이온을 가지는 염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그 예로서 질산유로퓸과 질산사마륨이 옥살산염과 혼합되었을 때와 염화세륨과 황산세륨이 혼합되었을 때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들 혼합물의 예는 원소들의 혼합물로부터 직접 유도된 화합물이 아니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고의로 만든 화합물로 간주하므로 **제3824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이들 금속들과 다른 금속과의 겹염(double salt)이나 착염(complex salt)을 포함한다.

이 호의 중요한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1) 세륨 화합물

(a) **산화물과 수산화물.** 산화제이세륨은 백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질산세륨에서 얻는다. ; 이는 요업의 유백제(opacifier) · 색유리 · 탄소 아크램프의 제조와 촉매로서 질산과 암모니아의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수산화제이세륨이 있다. 산화제일세륨과 수산화제일세륨은 매우 불안정하다.

(b) **세륨염.** 질산제일세륨($Ce(NO_3)_3$)은 가스맨틀 제조에 사용한다. 질산세륨암모늄은 적색 결정형태이다.

황산세륨(황산제일세륨과 그의 수화물 · 수화 황산제이세륨 : 등황색 프리즘이며 물에 녹는다)은 환원제로서 사진에 사용한다. 또한 황산세륨의 겹염이 있다.

염화세륨($CeCl_3$)을 비롯하여 무색의 제일세륨염과 황색이나 등색 제이세륨염이 있다.

옥살산세륨은 가루나 황백색 수화물 결정이며 사실상 물에 녹지 않는다. 세륨군의 금속 분리나 의학에 사용한다.

(2) **그 밖의 희토류금속 화합물.** 산화이트륨, 산화테르븀, 산화이트르븀의 혼합물과 상거래 관습상의 그 밖의 희토류(稀土類) 금속 산화물의 혼합물은 비교적 순수하다. 이 호에는 이들 산화물의 혼합물로부터 직접 유도된 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유로퓸 · 사마륨 등의 산화물은 원자로에서 감속 중성자 흡수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희토류(稀土類 : rare earth)의 천연화합물 : 예를 들면, 크세노타임(xenotime)(인산의 착염)·가돌리나이트(gadolinite)나 이터바이트(ytterbite)와 세라이트(cerite)(규산착염)(**제2530호**)와 모나자이트(monazite) [토륨과 희토류(稀土類)금속의 인산염](**제2612호**)
- (b) 프로메튬(promethium)의 무기염이나 유기염과 그 밖의 화합물(**제2844호**)

28.47 -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산화수소(H_2O_2)는 증류법에 의하여 황산의 전해산화(electrolytic oxidation)에 의하거나, 바륨이나 나트륨의 과산화물, 과황산 칼륨을 산(酸)으로 처리하여 얻으며 평범한 물(水)의 외관을 갖는 무색 액체이다. 또 시럽 상태이며 농축할 때는 피부를 부식한다. 유리병에 넣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과산화수소는 알칼리 매개체 특히 열이나 빛에 노출되었을 경우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보통 소량의 안정제(붕산이나 시트르산 등)를 넣어 분해 방지를 도우며 그 혼합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안정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요소를 결합한 과산화수소)도 포함한다.

과산화수소는 직물·새의 깃털·짚·스펀지·상아·모발 등의 표백에 사용한다. 또한 건염염색·물의 정제·오래된 그림의 보수·사진과 의약[방부제·지혈검자(haemostat)]에 사용한다.

일정 투여량으로 하였거나 소매용 포장으로 제시하는 과산화수소는 **제3004호**에 분류한다.

[28.48]

28.49 -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 - 탄화칼슘

2849.20 - 탄화규소

2849.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이성분탄화물(binary carbide)** : 이것은 탄소보다 전기적 양성(electropositive)이 더 큰 다른 원소와 탄소의 화합물이다. 아세틸화물로 알려진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잘 알려진 이성분탄화물은 다음과 같다.

- (1) **탄화칼슘(CaC₂)** : 순수 상태에서 투명하고 무색의 고체이며 불순물 상태에서는 유백색이나 회색이다. 물에 분해하여 아세틸렌을 생산하며 ; 아세틸렌(acetylene) 가스나 칼슘시아나미드 제조에 사용한다.
- (2) **탄화규소(SiC)** : 전기로에서 탄소와 실리카(silica)를 반응시켜 얻으며 흑색 결정이나 덩어리(lump)나 무정형의 덩어리며 잘게 부서진 모양과 알갱이 모양이 있다. 용융(熔融 : fused)이 곤란하고 ; 화학 시약에 저항력이 있으며 ; 굴절성이 크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하나 부서지기 쉽다. 연마재와 내화(耐火)제품에 사용하며 ; 흑연과 혼합하여 전기로나 높은 온도 오븐의 내면 도포에 사용한다. 또한 실리콘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식물·종이·판지나 그 밖의 물품의 뒷면에 가루나 알갱이의 형태(**제6805호**)로 되어 있거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수동숫돌(hand sharpening stone), 연마용스톤(polishing stone) 등의 형태(**제6804호**)로 되어 있는 탄화규소는 **제외한다**.
- (3) **탄화붕소(boron carbide)** : 전기로에서 흑연과 붕산을 반응시켜 얻으며 ; 흑색의 광택 있는 단단한 결정으로 연마재·압석의 시추·다이(dies)나 전극의 제조에 사용한다.
- (4) **탄화알루미늄(Al₄C₃)** : 전기로에서 산화알루미늄과 코크스를 가열처리하여 얻으며 ; 투명한 황색 결정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다. 물에 분해하여 메탄(methane)을 생산한다.
- (5) **탄화지르코늄(ZrC)** : 전기로에서 산화지르코늄과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반응시켜 얻으며 ; 공기나 물에 접촉하면 분해한다. 전구 필라멘트 제조에 사용한다.
- (6) **탄화바륨(BaC₂)** : 보통 전기로에서 얻으며 갈색의 결정 덩어리로서 물에 분해하여 아세틸렌(acetylene)을 생산한다.
- (7) **탄화텅스텐(tungsten carbide)** : 전기로에서 금속 가루나 금속 산화물과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반응시켜 얻으며 ;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해서 물에 분해되지 않는 가루이다. 녹는 점이 높고 대단히 단단하며, 내열성이 있다. 전도도는 금속과 유사하며, 철금속과는 쉽게 결합한다. 예를 들면, 공구를 소결(燒結)(보통 니켈이나 코발트와 같은 결합제를 사용) 하는데 쓰인다.

(8) **그 밖의 탄화물** : 몰리브덴(molybdenum) · 바나듐(vandium) · 티타늄(titanium) · 탄탈륨(tantalum)이나 니오븀(niobium)의 탄화물은 전기로에서 금속 가루나 금속 산화물과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반응시켜 얻는다. ; 탄화 텅스텐과 동일 목적에 사용한다. 또한 탄화크로뮴과 탄화망간이 있다.

(B) **하나 이상의 금속 원소와 결합된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물**[예: (Ti, W)C]

(C) **탄소와 다른 비(非)금속원소(예: 알루미늄붕탄화물 · 지르코늄탄질화물 · 티타늄탄질화물)와 결합된 하나 이상의 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

일부 이들 화합물 내의 원소비율은 화학량적 관계(stoichiometric)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계적 혼합물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이 호에는 탄소와 다음의 원소와 결합한 이성분 화합물은 **제외한다**. 즉, 산소(**제2811호**) · 할로젠(halogen) (**제2812호나 제2903호**) · 황(**제2813호**) · 귀금속(**제2843호**) · 질소(**제2853호**) · 수소(**제2901호**)이다.

(b) 금속 탄화물의 혼합물로 판(plate) · 봉(stick) · 팁(tip) 등과 공구 제조용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소결(燒結)되지 않는 것(**제3824호**)

(c) **제72류**의 탄화철합금[예: 백(白)선철](탄화철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

(d) 금속탄화물의 혼합물로 판(plate) · 봉(stick) · 팁(tip)이나 공구용과 유사한 것(**제8209호**)

28.50 -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 ·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4개의 그룹의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 중의 한 원소는 수소 · 질소 · 규소나 붕소이며, 다른 원소는 비(非)금속(non-metal)이나 금속(metal)원소로 되어 있다.

(A) 수소화물

중요한 수소화물은 수소화칼슘(CaH_2)이며 직접 각 원소를 결합하여 얻으며 ; 결정성 구조를 가진 백색 덩어리로서, 냉각 상태에서 물과 접촉하면, 분해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염화크로뮴에서 소결 크로뮴 제조용의 환원제로 사용한다.

또한 비소 · 규소 · 붕소(수소화붕소나트륨을 포함한다) · 리튬(과 알루미늄-리튬) · 나트륨 · 칼륨 · 스트론튬(strontium) · 안티모니 · 니켈 · 티탄 · 지르코늄(zirconium) · 주석 · 납 등의 수소화물이 있다.

이 호에는 수소와 다음 원소의 화합물은 **제외한다**. 즉 산소(제 2201 호 · 제 2845 호 · 제 2847 호 · 제 2853 호) · 질소(제 2811 호 · 제 2814 호 · 제 2825 호) · 인(제 2853 호) · 탄소(제 2901 호)과 그 밖의 특정 비(非)금속(제 2806 호와 제 2811 호) · 수소화팔라듐과 그 밖의 수소화귀금속은 제 2843 호에 분류한다.

(B) 질화물

- (1) **비(非)금속의 질화물**. 질화붕소(BN)는 가벼운 백색 가루로 내화성이 높다. 열과 전기 절연체로, 전기오븐의 내부도장 ; 도가니의 제조에 사용한다. 질화규소(Si_3N_4)는 회백색 가루이다.
- (2) **금속의 질화물**. 알루미늄 · 티탄 · 지르코늄 · 하프늄 · 바나듐 · 탄탈륨이나 니오븀의 질화물은 순수한 금속과 질소를 섞어 1,100도나 1,200도로 열처리하거나, 질소나 암모니아 가스 기류에서 탄소와 산소의 혼합물을 고온으로 열처리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질소가 다음 원소들과 화합한 것을 **제외한다**. 즉, 산소(제 2811호) · 할로젠(제 2812호) · 황(제 2813호) · 수소(제 2814호) · 탄소(제 2853호). 질화은과 그 밖의 귀금속의 질화물은 제 2843호에 분류하고 토륨과 우라늄의 질화물은 제 2844호에 분류한다.

(C) 아지드화물(azide)

금속의 아지드화물은 아지화 수소산(HN_3)의 염으로 간주한다.

- (1) **아지화나트륨(NaN_3)**. 나트륨아미드에 제일산화질소를 반응시키거나 히드라진, 아질산에틸과 수산화나트륨으로부터 얻는다. ; 무색 결정성 플레이크(flake)이며 물에 녹고 습한 공기에서는 약간 변질되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에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뇌산수은과 같이 충격에는 민감하나 열에는 뇌산수은보다 덜 민감하다. 뇌관의 폭약 제조에 사용한다.
- (2) **아지화납(PbN_6)**. 아지화나트륨과 초산납으로부터 제조되며 백색 결정 가루로 충격에 대단히 민감하고 물 속에 보관한다. 뇌산수은 대신 폭약으로 사용한다.

(D) 규화물

- (1) **규화칼슘(calcium silicide)**. 매우 단단하고 회색인 결정성 덩어리이다. 야금(冶金)·수소의 제조·연막탄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규화크로뮴(chromium silicide)**. 수개의 규화크로뮴이 있고 ; 연마제로 쓰이는 매우 단단한 물질이다.
- (3) **규화구리(copper silicide)(제7405호의 규소동의 마스터합금은 제외한다)**. 보통 부서지기 쉬운 판이며, 구리 정제용 환원제이고, 몰딩(moulding)의 촉진·경고성의 증가·내파열성을 증가시키는 환원제로 사용하며 ; 구리 합금의 부식경향을 감소시킨다. 또한 규소청동과 니켈구리합금 제조에 사용한다.
- (4) **마그네슘이나 망간의 규화물**

이 호에는 규소와 다음의 원소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즉 산소(제 2811 호)·할로젠(제 2812 호)·황(제 2813 호)·인(제 2853 호)·규화탄소는 제 2849 호에 분류하고 백금과 그 밖의 귀금속의 규화물은 제 2843 호에 분류하고 규소를 함유하는 페로합금(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 7202 호나 제 7405 호에 분류하고 알루미늄-규소합금은 제 76 류에 분류한다. 규소와 수소의 화합물은 앞에서 설명한 (A) 참조

(E) 붕화물

- (1) **붕화칼슘(CaB₆)**. 붕화염과 염화칼슘의 혼합물을 전해하여 얻는다. 어두운 결정성 가루로 야금(冶金)에 사용하는 강력한 환원제이다.
- (2) **붕화알루미늄**. 전기로에서 얻으며 결정성 덩어리이다. 유리 제조에 사용한다.
- (3) **티타늄(titanium)·지르코늄(zirconium)·바나듐(vanadium)·니오븀(niobium)·탄탈륨(tantalum)·몰리브덴(molybdenum)과 텅스텐(tungsten)의 붕화물**은 진공에서 순규소붕소 가루와 금속의 가루를 섞어 1,800℃에서 2,200℃로 열처리하거나 기체화시킨 금속과 붕소를 처리하여 얻는다. 이들은 매우 견고하고 전기 전도도가 양호하다. 초경소결합성(超硬燒結合成 : hard sintered compositions)에 사용한다.
- (4) **마그네슘·안티모니·망간과 철의 붕화물 등**

이 호에는 붕소와 다음 원소와의 화합물은 제외한다. 즉 산소(제 2810 호)·할로젠(제 2812 호)·황(제 2813 호)·귀금속(제 2843 호)·인(제 2853 호)·탄소(제 2849 호). 수소·질소·규소와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A)·(B)와 (D)를 참조한다.

이 호에는 구리-붕소 마스터 합금은 제외한다(제 7405 호의 해설 참조).

[28.51]

28.52 - 무기나 유기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2852.90 - 기타

이 호에는 아말감(amalgam)을 제외한 무기나 유기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은화합물은 아래와 같다.

(1) **산화수은(mercury oxide)** : 산화제이수은(HgO)은 수은의 가장 중요한 산화물이다. 밝은 적색 결정성 가루의 **적색 산화물**이나 짙은 오렌지-옐로우색 무정형 가루의 **황색 산화물**로 존재한다. 이러한 산화물은 독성이 있으며, 빛에 노출하면 흑색으로 변하고 이것은 해저 도료나 수은염의 조제에 사용하며 촉매로도 사용한다.

(2) **염화수은(mercury chloride)**

(a) **염화제일수은(칼로멜)(Hg₂Cl₂)** : 무정형의 덩어리·가루나 백색 결정으로 존재하며 ; 물에 녹지 않는다. 염화제일수은은 화공품(火工品, pyrotechnics)·자기공업 등에 사용한다.

(b) **염화제이수은[승홍(昇汞, corrosive sublimate)](HgCl₂)** : 프리즘 모양인 결정체나 백색의 긴 바늘 모양의 결정이며, 물(특히 뜨거운 물)에 녹는다. ; 맹독성이다. 철 청동화제·목재 방염 침투제·사진의 강화제·유기화학에서의 촉매로 사용하며 산화수은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3) **요드화수은(mercury iodide)**

(a) **요오드화제일수은(HgI₂이나 Hg₂I₂)** : 가루로 보통 무정형이고 때로는 결정이며 ; 보통 황색, 때로는 녹색이나 적색이다. ; 물에 조금 녹으며 독성이 강하다.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b) **요드화제이수은(HgI₂)** : 결정성 적색 가루로 거의 물에 녹지 않고 독성이 강하다. 사진(강화제)과 분석에 사용한다.

(4) **황화수은(mercury sulphide)** : 인조 황화수은(HgS)은 흑색이다. 승화할 때나 알칼리 다 황화물과 같이 가열하면 흑색의 황화물이 적색 가루[적색황화수은·인조 주사(朱沙)]로 변한다. 페인트용이나 실링 왁스의 안료(顔料)로 사용한다. 습식법(wet process)으로 얻은 물품은 광택이 있으나 빛에 대한 저항력이 별로 없다. 이 염은 독성이 있다.

천연의 황화수은(주사·천연 주사)은 **제외한다(제2617호)**.

(5) **황산수은(mercury sulphate)**

(a) **황산제일수은(Hg₂SO₄)** :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물에 분해하여 염기성 황산염으로 된다. 염화제일수은과 표준 전지의 제조에 사용한다.

(b) **황산제이수은(HgSO₄)** : 백색으로 무수물(無水物)은 결정성 덩어리이며, 빛에 흑색으로 변하고 수화물(H₂O)은 결정성 플레이크(flake)이다. 염화제이수은과 그 밖의 제이수은염의 제조와 금과 은의 야금(冶金) 등에 사용한다.

(c) **황산이산화삼수은**($\text{HgSO}_4 \cdot 2\text{HgO}$)(염기성 황산수은)

(6) **질산수은(mercury nitrate)**

(a) **질산제일수은**($\text{HgNO}_3 \cdot \text{H}_2\text{O}$) : 독성이 있고 무색 결정이다. 도금용 ; 의약품용 ; 펠트화 공정 전에 헤어(hair)의 캐로팅(carroting)을 위해 모자제조업자가 사용(hatters' *aqua fortis*) ; 초산제일수은 제조용에 사용한다.

(b) **질산제이수은**($\text{Hg}(\text{NO}_3)_2$) : 수화염이며(일반적으로 $2\text{H}_2\text{O}$) 무색 결정이나 백색·황색의 슬래브(slabs) 모양으로 조해성(潮解性)과 독성이 있다. 모자제조·도금에 사용한다. 또한 질화 보조제 그리고 수은뇌산염이나 산화제이수은 등의 제조에 있어서 유기 합성의 촉매에 사용한다.

(c) **염기성 질산수은(basic mercury nitrate)**

(7) **시아니드수은(mercury cyanide)**

(a) **시아니드제이수은**($\text{Hg}(\text{CN})_2$)

(b) **산화시아니드제이수은**($\text{Hg}(\text{CN})_2 \cdot \text{HgO}$)

(8) **무기염기의 시아노수은**. 시아노수은칼륨.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고 독성이 있다. 거울의 실버링(silvering)에 사용한다.

(9) **뇌산제이수은**[$\text{Hg}(\text{ONC})_2$ 로 추정된다] : 백색이나 황색 결정으로 바늘 모양이며, 끓는 물에 녹고 독성이 있다. 폭발할 때는 붉은 연기를 발생한다. 물이 담겨 있는 비(非)금속제 용기에 제시한다.

(10) **티오시아산 제이수은**($\text{Hg}(\text{SCN})_2$) : 백색 결정성 가루로 물에 약간 녹으며, 독성의 염으로 음화(negative) 확인을 위한 사진에 사용한다.

(11) **비산수은** : 비산제이수은($\text{Hg}_3(\text{AsO}_4)_2$). 옅은 황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는다. 오염방지 도료에 사용한다.

(12) **접염과 착염**

(a) **수은을 함유한 암모늄 염화물(염화수은 암모늄)** : 백색 결정성 가루로 비교적 뜨거운 물에 녹으며, 독성이 있고, 화공품(火工品 : pyrotechnics)에 사용한다.

(b) **요드화수은구리** : 암적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독성이 있다. 온도 측정기에 사용한다.

- (13) **염화아미노제이수은**(HgNH_2Cl) : 백색 가루로 빛에 노출되면 회색이나 황색으로 변화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 독성이 있다. 화공품(火工品 : pyrotechnics)에 사용한다.
- (14) **수은 유산염** : 유산의 염이다.
- (15) **유기-무기수은화합물**. 유기수은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 하나이나 그 이상의 수은 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Hg.X)기를 함유하고 있다(X는 무기나 유기산의 잔유기).
- (a) **디에틸수은(diethylmercury)**
 - (b) **디페닐수은(diphenylmercury)**
 - (c) **초산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 (16) **히드로머큐리디브로모플루오레세인(hydromercuridibromofluorescein)**
- (17)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수은화합물**[예: 수은의 탄닌산염 · 수은의 알부미네이트(albuminate) · 수은의 핵산단백질(nucleoproteid) 등]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수은(제2805호나 제30류)
- (b) 귀금속 아말감 · 귀금속과 비(卑)금속 모두 함유하는 아말감(제2843호) · 전부 비(卑)금속으로 된 아말감(제2853호)

28.53 -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중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1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2853.90 - 기타

(A)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인화물은 인과 다른 원소와의 화합물이다.

여기에 분류하는 인화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 원소들을 직접 반응함으로써 얻어진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 (1) **인동** : 반사로(反射爐 : reverberatory furnace)나 도가니에서 생산한다. 보통 누르스름한 회색빛 덩어리 상태이거나 결정 구조의 작고 매우 부서지기 쉬운 잉곳 상태이다. 인동과 동의 모합금(master alloy)이 인을 중량기준으로 15%를 초과하여 함유할 때만 이 호에 분류한다. 이 기준에 미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74류**에 분류한다. 인동은 매우 훌륭한 탈산제로서 그 금속의 경도를 증가시킨다. 인동은 용융된 금속의 유동성을 개선하며 인청동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인화칼슘**(Ca_3P_2) : 밤색깔의 작은 결정이거나 회색의 알갱이 모양의 덩어리 상태로서, 물에 접촉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점화하는 인화수소를 발산한다. 탄화칼슘과 함께 해상 신호(부표용 자기점화 섬광신호)용으로 사용한다.
- (3) **인화아연**(Zn_3P_2) : 회색이며, 유리질의 균열이 있는 독성 가루이다. 습한 공기 중에서 포스핀을 발산하며 열화된다. 설치류의 동물이나 메뚜기를 박멸하는데 사용하거나 의약품(인을 대신하는)으로 사용한다.
- (4) **인화주석** : 매우 부서지기 쉬운 은빛에서 흰색이 나는 고체이다. 합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 (5) **그 밖의 인화물**[예: 인화수소(고체, 액체, 가스), 비소·붕소·규소·바륨·카드뮴의 인화물]

이 호에서는 다음은 **제외한다**.

- (a) 인과 산소의 화합물(**제2809호**), 인과 할로겐의 화합물(**제2812호**)이나 인과 황의 화합물(**제2813호**)
- (b) 플라티늄과 그 밖의 귀금속 인화물(**제2843호**)
- (c) 인철(**제7202호**)

(B) 중류수·전도도수(傳導度水 : conductivity water)와 이와 유사한 순도(純度)의 물

이 호에는 중류수·재중류수나 전기침투수·전도도수(傳導度水 : conductivity water)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이온교환수지 매체로 처리한 물을 포함한다)만을 분류한다.

여과(濾過)·살균(殺菌)·정제나 연수 처리한 천연수는 **제외한다(제2201호)**. 의약품용을 위하여 일정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용으로 한 것은 **제3004호**에 분류한다.

(C) 그 밖의 무기화합물

다른 호에서 명백히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무기화합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류의 주 제2호에서 열거한 탄소의 화합물은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시아노겐과 시아노겐의 할로겐화합물**, 예를 들면, 염화시아노겐(chlorocyan)($CNCl$)·**시아나미드와 그의 금속유도체**[칼슘시아나미드(제3102호나 제3105호)는 제외한다]
- (2) **비(非)금속 산화황화물**(비소·탄소·규소의)과 **비(非)금속의 염화황화물**(인·탄소 등의) : 티오포스젠($CSCl_2$, 염화티오펜)은 이황화탄소에 염소를 반응시켜 얻으며 적색 액체로 질식성과 최루성이 있고 물에 녹으며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3) **알칼리아미드(alkali amide)** : 소다아미드나 나트륨아미드($NaNH_2$)는 나트륨-납 합금에 가열한 암모니아를 반응(反應)시키거나 용해된 나트륨에 가스 상태의 암모니아를 통과시켜 얻고, 핑크색이나 녹색 결정 덩어리로 물에 녹는다. 유기 합성·아지드화물·시아나화물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칼륨과 그 밖의 금속의 아미드가 있다.
- (4) **요드화 포스포늄(phosphonium iodide)** : 예를 들면, 인·요드와 물을 상호 반응시켜 얻고, 환원제이다.
- (5) **삼염화규소($SiHCl_3$)** : 실리콘과 염화수소의 반응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건식실리카(fumed silica)와 매우 순수한 실리콘(very pure silicon)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D) 액체 공기와 압축 공기

상거래 관습상의 액체 공기는 철강제나 청동제의 진공 용기에 넣어 제시한다. 이는 연소성이 크며 유기 물질을 파괴하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류하여 희가스(rare gas)·질소·산소를 얻는데 사용한다. 급속히 증발(蒸發)하므로 실험실(實驗室)에서 냉각제로 사용하고 목탄과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면 광산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폭발물이 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희가스(rare gas)를 제거한 액체 공기
- (2) 압축 공기

(E) 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 아말감

수은은 수 개의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알칼리 금속·알칼리토류 금속·아연·카드뮴·안티모니·알루미늄·주석·구리·납·비스무트 등)과 아말감(amalgam)을 형성한다.

아말감(amalgam)은 수은(水銀)과 금속(金屬)을 직접 반응시키거나; 금속염을 수은(水銀) 음극(陰極: cathode)으로 전해하거나; 수은염을 전해(금속을 음극으로 하여)하여 얻을 수 있다.

저온에서 전해와 증류(蒸溜)하여 얻은 아말감은 고온에서 얻은 것보다 활성이 있는 발화 금속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귀금속의 야금(冶金)에 사용한다.

- (1) **알칼리금속의 아말감**은 물에 분해(分解)하여 순수한 금속보다도 적은 열을 발산하므로; 순수한 금속보다는 좋은 환원제이다. **나트륨 아말감**은 수소제조에 사용한다.
- (2) **알루미늄 아말감**은 유기 합성에서 환원제로 사용한다.
- (3) 소량의 주석을 함유한 **구리 아말감**은 치과용에 사용한다. 구리 아말감은 금속시멘트로서 열처리하면 연하게 되어 자기(china)수선과 몰딩(moulding)에 적합하다.
- (4) **아연 아말감**은 건전지에서 부식 방지용으로 사용한다.
- (5) **카드뮴 아말감**은 치과와 소결(燒結)한 금속으로부터 텅스텐선(tungsten wire)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 (6) **안티모니-주석 아말감**은 “청동(bronzing)” 플라스터(plaster)에 사용한다.

비(卑)금속이 결합했는지에 상관없이 귀금속을 함유하는 아말감은 **제외한다(제2843호)**. 아말감 이외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2852호**에 분류한다.

제 29 류

유기화합품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
 - 다.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 마.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芳香性) 물질·구토제를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 아. 아조(azo)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과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coupler)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으로 한정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1504호의 물품이나 제1520호의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글리세린)
 - 나. 에틸알코올(제2207호나 제2208호)
 - 다. 메탄이나 프로판(제2711호)
 - 라. 제28류의 주 제2호의 탄소화합물
 - 마. 제3002호의 면역물품
 - 바. 요소(제3102호나 제3105호)
 - 사. 식물성·동물성 착색제(제3203호), 합성 유기착색제,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제3204호),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용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제3212호)
 - 아. 효소(제3507호)
 - 자.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을 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연료,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 충전용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 연료와 액화가스 연료(제3606호)

제6부
제29류

- 차. 제3813호의 소화기용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4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 카. 광학소자(제9001호, 예: 주석산에틸렌디아민의 것)
3.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제2904호부터 제2906호까지, 제2908호부터 제2911호까지, 제2913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에는 술폰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술폰화유도체·니트로술폰할로겐화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나 니트로소기는 제2929호에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란 즉, 각 해당호의 유기산소를 함유한 특성기(特性基)로서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에 열거된 산소관능기로 한정한다.
5. 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 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나. 에틸알코올과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다. 다음에 열거한 염은 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8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 (1) 제1절부터 제10절까지, 제2942.00호의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의 화합물이나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해당 유기화합물에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 (2) 제1절부터 제10절까지나 제2942.00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나 산(페놀관능화합물이나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라. 금속알코올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코올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제2905호). 다만, 에탄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6.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와 제2931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질소 외의 술폰화유 도체나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가지는 황이나 할로겐만의 것은 제외한다.

제6부
제29류

7. 제2932호·제2933호·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다가페놀,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다염기산의 이미드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가 여기에 열거된 환관능기나 관능기에서 생긴 것에만 적용한다.
8. 제2937호에서
- 가. “호르몬”에는 호르몬 분비·촉진 인자,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방지제(항 호르몬)를 포함한다.
- 나.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이란 호르몬 효과를 얻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호의 제품을 합성 중간체로서 주로 사용되는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에도 적용한다.



소호주:

1. 이 류의 각 호에서 화합물(또는 화합물의 그룹)의 유도체는 그 유도체가 다른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고 관련 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또는 화합물의 그룹)과 동일한 소호로 분류한다.
2. 제29류 주 제3호는 이 류의 소호 분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총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관하여 분류한다.

(A)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류의 주 제1호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separate chemically defined compound)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 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結晶格子 : crystal lattice)에 있어서, 분자 종류는 반복되는 단위셀(unit cell)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서 제조(정제를 포함한다) 중이나 후에 다른 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감미제로서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카린(saccharin)에 유당 등을 혼합한 물품은 **제외한다**(제2925호 해설 참조).

이 류에 분류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도 있다[주 제1호가목]. 다만, 제2940호의 당류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에 정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순물(impurity)”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과정(정제를 포함한다)에 전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 (b)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된 불순물
- (c)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
- (d) 부산물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이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초산메틸(methyl acetate)로 조성된 물품 중 그 물품의 용제(溶劑: solvent)로서의 적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메탄올(methanol)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이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3814호)**. 특정 화합물 [예를 들면, 에탄(ethane)·벤젠(benzene)·페놀(phenol)·피리딘(pyridine)]에 있어서는 특정한 순도가 규정하고 있다(제2901호·제2902호·제2907호·제2933호 해설 참조).

이 류에 분류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물에 용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제28류 총설에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안정제·항분제(抗粉劑: anti-dusting agent)나 착색제를 첨가한 비수용성 용액과 화합물(또는 그들의 용액)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스티렌(styrene)에 삼부틸카테콜(tertiary butylcatechol)을 첨가한 경우는 제2902호에 분류한다. 안정제·항분제(抗粉劑)·착색제의 첨가에 관한 제28류 해설의 규정은 이 류의 화합물에도 준용한다. 착색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이 류의 화합물은 방향성(芳香性) 물질[예: 소량의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을 첨가하고 있는 브롬화메탄(bromomethane)-제2903호]이나 구토제(emetec)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류에는 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는 상관없이 동일 유기화합물의 이성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화학관능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이어야 하며 천연 상태에서 공존하거나 동일 합성 과정에서 동시에 얻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환식탄화수소 이성체의 혼합물[입체 이성체(立體異性體: stereoisomer) **이외의 것**]은 포화나 불포화에 상관없이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27류)**.

(B) 제28류와 제29류의 화합물과의 차이점

귀금속·방사성 원소·동위원소·희토류 금속·이트륨(yttrium)과 스칸듐(scandium)의 유기 화합물과 제28류 총설 (B)에 열거한 탄소를 함유한 그 밖의 화합물은 29류에서 **제외한다**(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8류의 주 제2호 참조).

제28류의 주 제2호에 열거한 것 **이외의** 유기·무기화합물은 제29류에 분류한다.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하는 물품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정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 제2909호 -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
- 제2912호 - 알데히드(aldehyde)의 환식중합체 ;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 제2919호 - 락토포스페이트(lactophosphate)
- 제2923호 - 레시틴(lecithins)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제2934호 - 핵산과 그들의 염
- 제2936호 - 프로비타민(provitamin)과 비타민(vitamin)(농축물과 혼합물을 포함한다). 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2937호 - 호르몬
- 제2938호 - 글리코시드(glycoside)와 그 유도체
- 제2939호 - 식물 알칼로이드(alkaloid)와 그 유도체
- 제2940호 - 당 에테르(sugar ether) · 당 아세탈(sugar acetal) · 당 에스테르(sugar ester)와 이들의 염
- 제2941호 - 항생물질

이 류에는 또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제2927호의 해설 (A) 참조), 이들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coupler)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amine)과 이들의 염을 중성염 등으로 희석하여 표준 농도로 만든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아조(azo)염료의 제조에 사용하며 액체나 고체가 있다.

또한, 이 류에는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와 제2941호의 물품의 페그화(pegylated)[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PEG) 폴리머(polymer)] 유도체도 포함한다. 이러한 페그화 유도체는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과 같은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제29류의 다른 호로 분류하는 물품의 페그화 유도체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07호**).

(D)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제29류에서 제외하는 물품
(류의 주 제2호 참조)

- (1) 화학적으로 단일한 다음의 특정한 유기화합물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29류에서 **제외한다**(제28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28류 총설(B) 참조).
 - (a) 자당(蔗糖 : sucrose)(**제1701호**)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과 과당(**제1702호**)
 - (b)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제2207호**나 **제2208호**)
 - (c)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제2711호**)
 - (d) 면역물품(**제3002호**)
 - (e) 요소(**제3102호**나 **제3105호**)
 - (f) 동물성이나 식물성(예: 엽록소) 착색제(**제3203호**)
 - (g) 합성 유기착색제(안료를 포함한다)와 합성 유기형광증백제[예: 특정의 스틸벤(stilbene) 유도체](**제3204호**)
- (2) 제29류에 분류하는 특정의 그 밖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화학구조가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특정 처리를 가한 경우이거나 특정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29류에서 **제외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제3004호**)
 - (b) 형광을 발하도록 처리한 것으로서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예: 살리실알다진(salicylaldazine)](**제3204호**)
 - (c)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나 그 밖의 착색제(**제3212호**)
 - (d) 소매 포장된 조제향료와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예: 아세톤)(**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 (e) 글루나 접착제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순 중량 1kg이하인 것(**제3506호**)
 - (f)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모양으로 포장된 고체 연료[예: 메타알데히드(metaldehyde) · 헥사메틸렌테트라민(hexamethylenetetramine)]과 라이터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cm³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어진 액체 연료와 액화가스 연료(예: 액체부탄)(**제3606호**)

- (g) 사진용의 히드로퀴논(hydroquinone)과 그 밖의 단일 물질로서 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포장한 것(제3707호)
- (h) 제3808호에 열거된 것과 같이 포장된 소독제와 살충제 등
- (ij) 제3813호의 소화기용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예: 사염화탄소)(제3813호)
- (k)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예: 제2935호의 클로라민(chloramine)을 물에 용해시킨 것](제3824호)
- (l) 광학용품[예: 주석산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tartrate)](제9001호)

(E) 제29류의 2개 이상의 호에 동시에 해당되는 물질의 분류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물질들은 해당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은 락톤(제2932호)이나 비타민(제2936호)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인 제2936호에 분류한다. 같은 이유로, 환식알코올(제2906호)이며 개조 변경되지 아니한 고난구조(unmodified gonane structure)를 갖는 스테로이드(steroid)로서 주로 호르몬(제2937호)으로 사용하여지는 알릴 에스트레놀(allylestrenol)은 제2937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특히 제2940호의 용어 끝에서 제2937호, 제2938호, 제2939호의 물질은 제외하도록 한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F) 할로젠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와 이들의 복합유도체 ; 제2911호 · 제2912호 · 제2914호 · 제2918호와 제2922호에 규정한 "산소관능" (류의 주 제4호 참조)

제29류의 특정 호에는 할로젠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와 관련되는 물질이 포함되며 이들 관련 물질에는 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 예: 술폰할로젠화(sulphohalogenated)유도체 · 니트로할로젠화(nitrohalogenated)유도체 ·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술폰할로젠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 등

니트로기(nitro group)와 니트로소기(nitroso group)는 제2929호에 해당되는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할로젠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는 어미 화합물(parent compound)의 수소원자 한 개 이상을 한 개 이상의 할로젠(halogen) · 술폰(sulpho)(-SO₃H) · 니트로(nitro)(-NO₂) · 니트로소(nitroso)(-NO)기나 이들의 화합물로 치환하므로써 형성된다. 분류할 때 고려되는 모든 관능기[예: 알데히드(aldehyde), 카르복실산(carboxylic acid), 아민관능기]는 이들 유도체에 본래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마지막 문단과 제2911호 · 제2912호 · 제2914호 · 제2918호와 제2922호의 목적상, 이들 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산소관능(oxygen function)"은 제2905호에서 제2920호까지에서 규정한 유기산소를 함유한 특성기(特性基)(characteristic organic oxygen containing group)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을 제2911호 · 제2912호 · 제2914호와 제2918호에 분류하기 위해 고려된 산소관능기(oxygen functional group)는 본래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G) 에스테르(ester) · 염 · 배위화합물 · 특정 할로젠화합물의 분류
(류의 주 제5호 참조)

(1) 에스테르(ester)

이 류의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ester)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예:

- (a) 초산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acetate)[제2909호의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과 제2915호의 초산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에스테르]* 제2915호
- (b) 술폰산메틸벤젠(methyl benzenesulphonate)[제2904호의 술폰산벤젠(benzene-sulphonic acid)과 제2905호의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과의 반응에서 생성된 에스테르]* 제2905호
- (c) 수소프탈산 부틸(butyl hydrogenphthalate)[폴리카르복시산(polycarboxylic acid)에서 한 개의 산기(COOH)의 수소가 치환된 에스테르]* 제2917호
- (d) 글리콜산부틸프탈릴부틸(butyl phthalyl butyl glycollate)[제2905호의 부틸알코올(butyl alcohol) · 제2917호의 프탈산(phthalic acid)과 제2918호의 글리콜산(glycollic acid)과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에스테르]* 제2918호

이 규정은 에틸알코올(ethyl alcohol)로 된 산관능화합물의 에스테르(ester)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에틸알코올을 제29류에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스테르는 유도된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예:

초산에틸(ethyl acetate)[에틸알코올(ethyl alcohol)과 제2915호의 초산(acetic acetate)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에스테르(ester)] : 제2915호

당에스테르(sugar ester)와 그 염은 제2940호로 분류됨에 유의한다.

(2) 염

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8류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물품은 제외하고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a) 제1절부터 제10절까지나 제2942호의 산(acid)관능 · 페놀(phenol)관능 · 에놀(enol)관능 화합물이나 유기 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그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들 염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다.

- (i) 무기염기와 산관능 · 페놀관능 · 에놀관능 유기화합물과의 반응

예:

메톡시벤조산나트륨(sodium methoxybenzoate)[수산화나트륨과 제2918호의 메톡시벤조산(methoxy-benzoic acid)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제2918호

이 범주의 염은 무기염기와 상기에 언급된 타입의 산에스테르(acid esters)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될 수도 있다.

예:

프탈산엔부틸구리(n-Butyl copper phtalate)[수산화구리와 제2917호의 수소프탈산부틸(butyl hydrohen phthalate)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제2917호

또는 (ii) 무기산과 유기염기의 반응

예:

염화디에틸아민(diethylamine hydrochloride)[제2806호의 염산과 제2921호의 디에틸아민(diethylamine)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제2921호

- (b) 제1절부터 제10절까지나 제2942호의 유기화합물 상호 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나 산[페놀(phenol)관능이나 에놀(enol)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예:

(i) 초산아닐린(aniline acetate)[제2921호의 아닐린과 제2915호의 초산(acetic acid)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제2921호

(ii) 페녹시초산메틸아민(methylamine phenoxyacetate)[제2918호의 페녹시초산(phenoxyacetic acid)과 제2921호의 메틸아민(methylamine)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제2921호

(3) 배위화합물(co-ordination comp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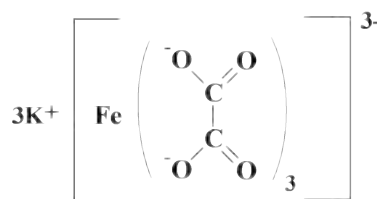
금속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 개나 그 이상의 리간드(ligand)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일반적으로 2~9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帶電)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결합의 수와 금속과 이와 결합하는 원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주어진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제11절이나 제2941호로 분류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품목분류상 실제 화합물로 간주한다) 제29류의 해당하는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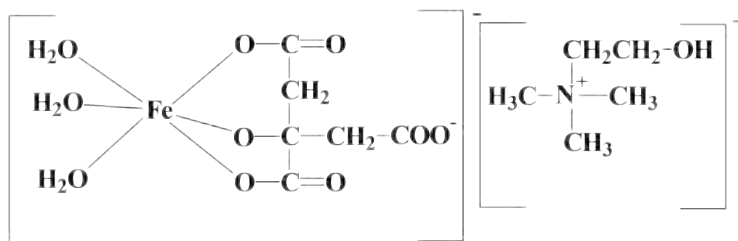
이 류의 주 제5호다목(3)의 목적상, “조각(fragment)”이라는 용어는 분리 후 생성되는 리간드(ligand)와 금속-탄소 결합을 포함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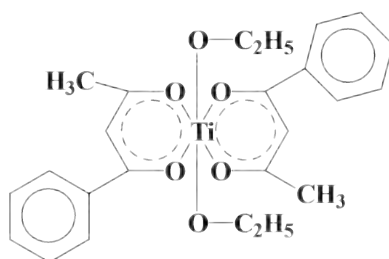
트리옥살라토철III산 칼륨(potassium trioxalatoferrate)은 금속결합의 분리 후 얻어지는 조각이 해당하는 옥살산(oxalic acid)(제2917호)에 분류한다.



콜린산철(ferrocholate)(INN)은 콜린(choline)을 분류하는 제2923호에 분류한다. 이것을 품목분류상 고려될 수 있는 다른 조각인 구연산(citric acid)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분류 가능한 호 중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뷰도티테인(budotitane)(INN) : 금속결합의 분리 후에 두 개의 조각이 얻어지는데, 한 개는 제22류의 에탄올에 해당하고, 다른 한 개는 제2914호에 분류하는 벤조일아세톤(benzoylacetone)과 이들의 에놀기(enol-func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뷰도티테인(budotitane)(INN)은 제2914호에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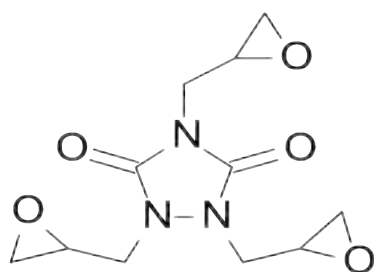
(4)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합물(halides of carboxylic acid)*

이러한 할로겐화합물은 이를 구성하는 산(acid)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예: 염화이소부틸릴(isobutyryl chloride)은 이소부틸산(isobutyric acid)과 같이 제2915호에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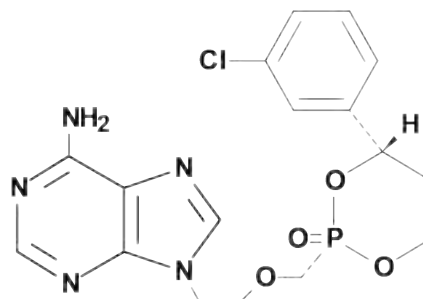
(H) 제2932호, 제2933호, 제2934호에서의 분류
(류의 주 제7호)

제2932호, 제2933호, 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epoxide),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 알데히드(aldehyde)나 티오알데히드(thioaldehyde)의 환식중합체, 다염기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 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이나 다가페놀(polyhydric phenol)과 다염기산(polybasic acid)과의 환식에스테르(cyclic ester), 다염기산의 이미드(imide)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 이것들은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여기에 나열한 환관능기나 관능기에서 생긴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류의 주 제7호의 앞부분에 열거된 관능기에 더해서 다른 고리를 가지는 헤테로원자(hetero-atom)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환구조를 형성하는 관능기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나키시론(anaxirone)(INN)과 프라데포비르(pradefovir)(INN)는 2 이상의 다른 헤테로원자를 가지는 복소환식 화합물로서 제2934호에 분류하며,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만을 분류하는 제2933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아나키시론 (INN)



프라데포비르 (INN)

(IJ) 유도체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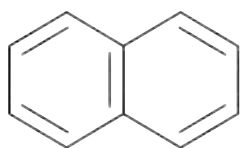
화학 화합물의 유도체의 호 단위의 분류는 통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 류의 주 제3호는 유도체가 잠정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호에 분류 가능할 때 적용한다.

이 류의 한 호에 분류하는 경우에 유도체는 소호주 제1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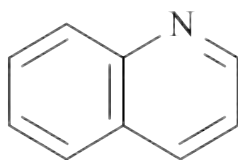
(K) 붙은 고리구조

붙은 고리 구조는 적어도 두 개의 고리가 있는 구조로서 이 고리들은 하나(단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또한 두 개(단 두 개) 원자를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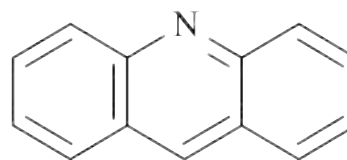
붙은 고리구조는 다환식 화합물(예: 다환식 탄화수소, 헤테로고리화합물)의 분자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환식 고리가 두 개의 인접 원자를 갖고 있는 공유변을 가지고 결합하여 있는 바, 아래의 예는 이를 나타낸 것이다. 복합 고리 구조에서는 특정 고리의 두 개 이상의 변에 붙음이 일어날 수 있다.



나프탈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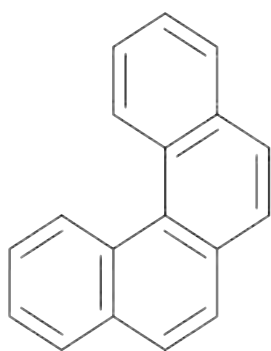


퀴놀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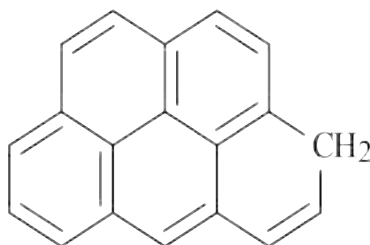
붙은 퀴놀린

두 개의 고리가 두 개(단 두 개)의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다환식 화합물은 “오르토-붙음(ortho-fused)”이라고 불린다. 한편, 한 개의 고리가 두 개의 원자(단 두 개)를 연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고리 중 두 개 이상의 고리와 각각 공유하고 있는 다환식 화합물은 “오르토(ortho)와 페리(peri) 붙음”이라고 일컬어진다. 다음의 보기는 이와 같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붙은 고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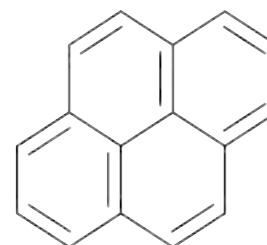
공통면 3개
공통원자 6개

“오르토 붙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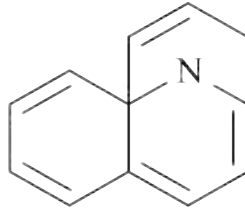
공통면 7개
공통원자 8개

“오르토와 페리 붙음” 구조



공통면 5개
공통원자 6개

한편 아래그림은 가교구조(붙지 않은)로 된 퀴놀린(quinoline)의 예이다.



가교(架橋)구조
(붙지 않은) 퀴놀린

이 류의 해설 본문에서 화학식 다음에 나오는 별표 “*”는 그 화학구조를 제29류 해설에 대한 부속서에서 참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제1절

탄화수소와 이들의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01호 - 제2904호)

29.01 - 비환식탄화수소

- 2901.1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 2901.21 -- 에틸렌
- 2901.22 -- 프로펜(프로필렌)
- 2901.23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 2901.24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 2901.29 -- 기타

비환식탄화수소(acyclic hydrocarbon)는 단지 탄소와 수소로 된 환(ring)을 갖지 않는 화합물을 말하며 이들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 (A) 포화비환식탄화수소(saturated acyclic hydrocarbon)
- (B)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unsaturated acyclic hydrocarbon)

(A) 포화비환식탄화수소

이들은(C_nH_{2n+2})의 일반식을 갖고 있는 동족계열(同族系列 : homologous series)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천연적으로 풍부하게 얻어지며 석유의 주성분이다.

그 기본이 되는 탄화수소는 한 개의 탄소 원자로 된 **메탄(methane)**(CH_4)이다. 그러나 메탄(methane)과 세 개의 탄소 원자로 된 **프로판(propane)**(C_3H_8)은 순수한 것이라도 **제2711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포화비환식탄화수소(saturated acyclic hydrocarbon)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두 개의 탄소 원자로 된 **에탄(ethane)**(C_2H_6)
 - 순도(純度 : purity)가 용적(容積 : volume)으로 95% 이상의 것은 이 호에 분류하나 순도(純度)가 그 미만인 것은 이 표에서 **제외하며 제2711호**에 분류한다.
- (2) 4개의 탄소 원자로 된 **부탄(butane)**(C_4H_{10})
- (3) 5개의 탄소 원자로 된 **펜탄(pentane)**
- (4) 6개의 탄소 원자로 된 **헥산(hexane)**
- (5) 7개의 탄소 원자로 된 **헵탄(heptane)**
- (6) 8개의 탄소 원자로 된 **옥탄(octane)**
- (7) 9개의 탄소 원자로 된 **노난(nonane)**

- (8) 10개의 탄소 원자로 된 **데칸(decane)**
 (9) 15개의 탄소 원자로 된 **펜타데칸(pentadecane)**
 (10) 30개의 탄소 원자로 된 **트리아콘탄(triacontane)**
 (11) 60개의 탄소 원자로 된 **헥사콘탄(hexacontane)**

포화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으며 상온(常溫)·상압(常壓)에서 4개 이하의 탄소 원자로 된 탄화수소는 기체 상태이며 ; 5개 이상 15개 이하의 탄소 원자로 된 것은 액체 상태이고 ; 이를 초과하는 탄소 원자로 된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이다.

탄화수소의 분자 중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알킬기(alkyl radical)와 치환될 수 있으며 [예: 메틸(methyl)·에틸(ethyl)·프로필(propyl)] ; 따라서 이소부탄(isobutane)[2-메틸프로판(2-methylpropane)·트리메틸메탄(trimethylmethane)]은 노말부탄(normal butane)과 동일한 분자식을 갖는다.

공업상이나 상거래 관습상 이 호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탄화수소는 **에탄(ethane)과 부탄(butane)가스**로서 이들은 석유와 천연가스로부터 유도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포화비환식탄화수소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의 모양이며 석유와 천연가스를 정제하거나 합성에 의하여 얻는다[에탄(ethane)의 순도(純度 : purity)에 대한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1) 참조]. 조(粗 : crude)부탄가스·조(粗)석유가스와 이와 유사한 **제2711호**의 조(粗)탄화수소의 가스는 **제외한다**.

(B) 불포화비환식 탄화수소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unsaturated acyclic hydrocarbon)는 같은 수의 탄소 원자로 된 포화비환식 탄화수소보다도 수소원자의 수가 2, 4, 6 등으로 적게 함유되어 있다. 이는 분자 내의 탄소 간에 이중이나 삼중결합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1) 모노에틸렌계 탄화수소(monoethylenic hydrocarbon)

이들은 (C_nH_{2n}) 의 일반식을 갖는 동족계열(同族系列 : homologous series)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다수의 유기 물질의 열분해(熱分解 : thermal decomposition)[석탄 가스(coal gas)·석유의 분류에 의한 물품 등]에 의하여 생성되며 ; 이들은 또한 합성에 의해서도 제조한다.

(a) 동족계열(同族系列) 중의 첫째의 것은 가스 상태로서 다음과 같다.

(i) **에틸렌(ethylene)[에텐(ethene)]**(C_2H_4): 약간의 에테르(ether)의 냄새를 지니고 있는 무색의 가스로서 강한 마취력을 갖고 있으며 광범한 유기화합물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예: 산화 에틸렌(ethylene oxide)·에틸벤젠(ethylbenzene)·합성에탄올(synthetic ethanol)과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순도(純度)가 용적(容積)으로 95% 이상인 것은 이 호에 분류하나 순도(純度)가 그 미만인 에틸렌(ethylene)은 **제2711호**에 분류한다.

(ii) **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lene)]**(C_3H_6) : 질식성이 있는 무색 가연성 가스이다.

순도(純度)가 용적(容積)으로 90% 이상인 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lene)]은 이 호에 분류하며 순도(純度)가 그 미만인 프로필렌은 **제2711호**에 분류한다.

(iii) **부텐(butene)[부틸렌(butylene)](C₄H₈)**

이 호에 분류하는 불포화비환식 탄화수소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제2711호**의 가공하지 않은 가스 상태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정상 거래되는 모든 이들 물품들은 가압 하의 액체 상태로 거래한다.

(b) 탄소 원자의 수를 5개부터 15개까지 갖고 있는 모노에틸렌계 탄화수소(monoethylenic hydrocarbon)는 액체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i) **펜텐(아밀렌)[pentene(amylen)]**

(ii) **헥센(hexene)**

(iii) **헵텐(heptene)**

(iv) **옥텐(octene)**

(c) 탄소 원자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것은 고체 상태이다.

(2) 폴리에틸렌계 탄화수소(polyethylenic hydrocarbon)

이들은 2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동계 계열(同系系列)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프로파디엔(알렌)[propadiene(allene)](C₃H₄)**

(b) **부타-1,2-디엔(buta-1,2-diene)[1,2-부타디엔(1,2-butadiene)][메틸알렌(methylallen)](C₄H₆)**

(c) **부타-1,3-디엔(buta-1,3-diene)[1,3-부타디엔(1,3-butadiene)](C₄H₆)** : 무색 가연성 가스

(d) **2-메탈부타-1,3-디엔(2-methylbuta-1,3-diene)[이소프렌(isoprene)](C₅H₈)** : 무색 가연성 액체

(3) 아세틸렌계 탄화수소(acetylene series)

아세틸렌계 탄화수소(acetylenic hydrocarbon)는 분자 내에 한 개에 삼중결합[모노아세틸렌(mono-acetylene) : 일반식 C_nH_{2n-2}]이나 그 이상의 삼중결합[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물품은 **아세틸렌(acetylene)(C₂H₂)**이며 특유의 냄새를 갖고 있는 무색의 가스이다. 아세틸렌으로 광범위한 물품을 합성 제조할 수 있다[예: 초산(醋酸 : acetic acid) · 아세톤(acetone) · 이소프렌(isoprene) · 클로로 초산(chloroacetic acid) · 에탄올(ethanol)].

이 물품은 구조토를 채운 특수강의 실린더(cylinder)에 압력을 가하여 아세톤(acetone)에 용해된 상태로 제시되며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그 밖의 아세틸렌계 탄화수소

(a) **프로핀(알리렌 · 메틸아세틸렌)[propyne(allylene · methylacetylene)]**

(b) **부틴(에틸아세틸렌)[butyne(ethylacetylene)]**

(4) 에틸렌아세틸렌계 탄화수소(ethylene-acetylene hydrocarbon)

이들은 그들 분자 안에 에틸렌계 결합과 아세틸렌계 결합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닐아세틸렌(vinylacetylene)**[아세틸렌의 수소원자 하나가 비닐기(vinyl group)와 치환된 것]과 **메틸비닐아세틸렌(methylvinylacetylene)**[아세틸렌의 수소원자 하나가 비닐기(vinyl group)와 또 다른 수소원자는 메틸기(methyl group)와 서로 치환된 것]이다.

29.02 - 환식탄화수소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 2902.11 -- 시클로헥산
- 2902.19 -- 기타
- 2902.20 - 벤젠
- 2902.30 - 톨루엔
 - 크실렌
- 2902.41 -- 오르토-크실렌
- 2902.42 -- 메타-크실렌
- 2902.43 -- 파라-크실렌
- 2902.44 - 혼합크실렌 이성체
- 2902.50 - 스티렌
- 2902.60 - 에틸벤젠
- 2902.70 - 큐멘
- 2902.90 - 기타

환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을 가지고 한 개 이상의 환(ring)을 갖는 구조식의 화합물이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A) 포화지환식과 불포화지환식 탄화수소

(B)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e)

(C) 방향족(芳香族 : aromatic) 탄화수소

(A) 포화지환식과 불포화지환식 탄화수소

이들은 단환(單環) 포화지환식인 경우에는 일반식이 C_nH_{2n} 인 환(環)식 탄화수소이고, 다환(多環) 포화지환식이거나 불포화(불포화지환식)인 경우에는 일반식이 C_nH_{2n-x} (여기에서 x 는 2, 4, 6 등이다)인 환(環)식 탄화수소이다.

- (1) 단환(單環) 포화지환식 탄화수소에는 특정 석유에서 발견되는 폴리메틸렌(polymethylene)계와 나프텐(naphthene)계 탄화수소를 포함한다.
 - (a) 시클로프로판(cyclopropane)(C_3H_6)(가스)
 - (b) 시클로부탄(cyclobutane)(C_4H_8)(가스)
 - (c) 시클로펜탄(cyclopentane)(C_5H_{10})(액체)
 - (d) 시클로헥산(cyclohexane)(C_6H_{12})(액체)

(2) **포화다환식 탄화수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데카히드로나프탈렌(decahydronaphthalene)**($C_{10}H_{18}$) : 무색의 액체로서 페인트와 래커(lacquer)의 용제(溶劑 : solvent)와 광택제(polishes) 등으로 사용한다.
- (b) **가교결합 화합물** : 예를 들면, 살충제 HEOD의 원료인 1,4,4a,5,6,7,8,8a-옥타히드로(octahydro)-*엑소(exo)*-1,4-*엔도(endo)*-5,8-디메타노나프탈렌(dimethanonaphthalene)($C_{12}H_{16}$)
- (c) **“케이지(cage)”의 구조를 가진 화합물** : 펜타시클로(pentacyclo) [5.2.1.0^{2,6}.0^{3,9}.0^{5,8}] 데칸(decane)($C_{10}H_{22}$)으로서 도데카클로로펜타시클로(dodecachloropentacyclo) [5.2.1.0^{2,6}.0^{3,9}.0^{5,8}] 데칸(decane)의 원료

(3) **불포화지환식 탄화수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시클로부텐(cyclobutene)**(C_4H_6)(가스)
- (b) **시클로펜텐(cyclopentene)**(C_5H_8)(액체)
- (c) **시클로헥센(cyclohexene)**(C_6H_{10})(액체)
- (d) **시클로옥타테트라엔(cyclo-octatetraene)**(C_8H_8)(액체)
- (e) **아주렌(azulene)**($C_{10}H_8$)(고체)

그러나 이 호에는 **제3204호**에 분류하는 합성 카로틴(carotene)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e)

이들 탄화수소는 일반적인 화학구조에 있어서 시클렌기(cyclene group)와 차이가 없으며 일반식은 $(C_5H_8)_n$ ($n \geq 2$)로서 방향성(芳香性)을 갖는 휘발성의 액체이며 천연적으로 식물 중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

- (1) **피넨(pinene)** : 터펜틴(turpentine) · 송목유(松木油 : pinewood oil) · 계피유 등의 주성분으로서 ; 무색의 액체이다.
- (2) **캄펜(camphene)** : 육두구(肉荳蔻 : nutmeg) 기름 · 페티그레인유(petitgrain oil) 등에 함유되어 있다.
- (3) **리모넨(limonene)***: 귤류 과실의 기름에 함유되어 있으며 ; 디펜텐(dipentene)[리모넨의 광학이성체(optical isomers of limonene)의 혼합물이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텐(dipentene)**은 **제외한다(제3805호)**.

이 호에는 정유(essential oil)(**제3301호**)와 검(gum) · 목(wood) · 황산터펜틴(sulphate turpentine)과 침엽수를 증류하거나 그 밖의 처리에 의하여 생산된 그 밖의 테르펜계유(terpenic oil)를 **제외한다(제3805호)**.

(C) 방향족 탄화수소

이들 화합물은 탄소 원자 여섯 개와 수소원자 여섯 개로 되어 있고, 이것을 여섯 개의 (CH)로 배열하여 6각 고리의 모양으로 된 벤젠(benzene)의 한 개나 그 이상의 단일 벤젠고리와 붙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다.

(I) **단지 한 개의 벤젠고리로 된 탄소수소** : 벤젠과 그의 동족계열(同族系列 : homologue)을 포함한다.

- (a) **벤젠(benzene)**(C_6H_6) : 석탄가스, 일부 석유, 그리고 탄소가 풍부한 여러 유기화합물(예: 석탄·갈탄 등)을 건조 증류하여 생긴 액체 물질에서 얻어지며 ; 합성으로도 얻어진다. 순수한 것은 휘발성·인화성이 있고 방향성 냄새가 나는 무색·유동성·굴절성이 있는 액체이다. 수지·지방·정유(essential oil)·고무 등을 용이하게 용해시킨다. 많은 물질들이 벤젠(benzene) 합성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벤젠의 순도(純度 : purity)는 전 중량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의 저순도 벤젠은 **제외한다(제2707호)**.

- (b) **톨루엔(메틸벤젠)[toluene(methylbenzene)]**($C_6H_5CH_3$) : 벤젠(benzene)의 수소원자 1개가 메틸기(methyl group)로 치환된 유도체로서 콜 타르 경유(light coal tar oil)의 증류나 비환식 탄화수소의 고리형성(cyclisation)에 의하여 얻어지며 무색·유동성·굴절성·인화성의 액체로서 벤젠(benzene)과 유사한 방향성(aromatic odour)을 가진다.

이 호에 분류하는 톨루엔의 순도(純度 : purity)는 전 중량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의 저순도 톨루엔은 **제외한다(제2707호)**.

- (c) **크실렌(디메틸벤젠)[xylene(dimethylbenzene)]**($C_6H_4(CH_3)_2$)* : 수소 원자 두 개가 두 개의 메틸기(methyl group)로 치환된 벤젠의 유도체이다. 세 종류의 이성체로서 오르토-크실렌(*o*-xylene)·메타-크실렌(*m*-xylene)·파라-크실렌(*p*-xylene)이 있다. 크실렌(xylene)은 무색 인화성 액체로서 콜타르경유(light coal tar oil)에서 얻어진다.

이 호에 분류하는 크실렌의 순도(純度 : purity)는 이성체의 합계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 이상의 것이고 그 미만의 저순도 크실렌은 **제외한다(제2707호)**.

- (d)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 aromatic) 탄화수소는 벤젠(benzene)고리와 1이나 그 이상의 측쇄(測鎖 : side chain)·개쇄(open chain)·폐쇄(closed chain)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스티렌(styrene)**($C_6H_5CH=CH_2$)* : 무색·유상 액체로서 주로 플라스틱[폴리스티렌(polystyrene)] 과 합성고무 제조 원료로 사용한다.

- (2) **에틸벤젠(ethylbenzene)**($C_6H_5C_2H_5$) : 무색·인화성·유동성 액체로서 콜타르(coal tar)에 함유되어 있고 벤젠과 에틸렌에서 보통 제조한다.

- (3) **큐멘(cumene)**($C_6H_5CH(CH_3)_2$) : 무색 액체로서 석유에 함유되어 있고 주로 페놀(phenol)·아세톤(acetone)·알파-메틸스티렌(α -methylstyrene)제조나 용매로 사용한다.

- (4) **파라-시멘(*p*-cymene)**($CH_3C_6H_4CH(CH_3)_2$)* : 여러 가지의 정유(essential oil) 중에 많이 존재하며 무색 방향성(芳香性) 액체이다.

조(粗 : crude) 파라-시멘은 **제3805호**에 분류한다.

- (5)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tetrahydronaphthalene)**($C_{10}H_{12}$, 테트라린) : 나프탈렌(naphthalene)의 축매 수소화에 의하여 얻어지고, 테르펜(terpene)과 같은 향을 갖는 무색 액체로서 용매 등에 사용한다.

(II) 두 개 이상의 붙지 않는 벤젠 고리(benzene ring)로 된 탄화수소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비페닐(biphenyl)**($C_6H_5C_6H_5$) : 좋은 냄새가 나는 광택성의 백색 결정체로서 ; 특히 염소 치환유도체(가소제)의 조제·냉각제[단일이나 비페닐에테르(biphenyl ether)와의 혼합물]와 원자로에서 감속제(減速劑 : moderator)로 사용한다.

- (b) **디페닐메탄(diphenylmethane)**($C_6H_5CH_2C_6H_5$) : 두 개의 벤젠고리(benzene ring)가 메틸렌기(methylene group)(CH_2)와 결합된 탄화수소로서 제라늄(geranium)을 연상케 하는 강한 냄새를 가진 무색 바늘 모양의 결정체이며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c) **트리페닐메탄(triphenylmethane)**($CH(C_6H_5)_3$) : 메탄의 수소원자 세 개를 세 개의 벤젠고리(benzene rings)로 치환한 것
- (d) **터페닐(terphenyl)** : 터페닐(terphenyl)이성체의 혼합물은 냉각제(coolant)와 원자로에서 감속제(減速劑 : moderator)로 사용한다.

(Ⅲ) 두 개 이상의 붙은 벤젠고리(benzene ring)로 된 탄화수소

- (a) **나프탈렌(naphthalene)**($C_{10}H_8$) : 두 개의 벤젠고리(benzene ring)가 붙은 것으로서, 콜타르(coal tar)·석유·석탄가스·갈색 타르(tar) 등에서 얻어지며 특유의 냄새를 갖는 고운 백색 플레이크(flake) 모양의 결정체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나프탈렌의 순도(純度 : purity)는 그 결정점이 섭씨 79.4℃ 이상이어야 하고, 그 미만의 저순도 나프탈렌은 **제외한다**(제2707호).
- (b) **페난트렌(phenanthrene)**($C_{14}H_{10}$) : 세 개의 벤젠고리(benzene ring)가 붙은 것으로서, 콜타르(coal tar) 증류로부터 얻어지는 물질 중의 하나이며 ; 미세한 무색의 형광 결정이다.
페난트렌은 순수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상태의 화학적 단일화합물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하고, 조(粗 : crude)상태의 것은 **제외한다**(제2707호).
- (c) **안트라센(anthracene)**($C_{14}H_{10}$) : 벤젠고리(benzene ring) 세 개가 붙은 것으로서, 콜타르(coal tar)에 함유되어 있고 무색 결정 모양이나 황색의 가루이며 자청색의 형광물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안트라센은 그 순도(純度 : purity)가 전 중량의 90% 이상이어야 하고, 그 미만의 저순도 안트라센은 **제외한다**(제2707호).

이 그룹에는 또한 다음의 탄화수소를 포함한다.

- (1) **아세나프텐(acenaphthene)**
- (2) **메틸안트라센(methylanthracene)**
- (3) **플루오렌(fluorene)**
- (4) **플루오란텐(fluoranthene)**
- (5) **피렌(pyrene)**

이 호에는 혼합 알킬아렌(alkylarene)인 도데실벤젠(dodecylbenzene)과 노닐나프탈렌(nonylnaphthalene)은 **제외한다**(제3817호).

29.03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 2903.11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 2903.12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 2903.13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2903.14 -- 사염화탄소
- 2903.15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 2903.19 -- 기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 2903.21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2903.22 -- 삼염화에틸렌
- 2903.23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 2903.29 -- 기타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 2903.41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 2903.42 -- 디플루오로메탄(HFC-32)
- 2903.43 --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 2903.44 --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 2903.45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 2903.46 --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 2903.47 --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 2903.48 --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 2903.49 -- 기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 2903.51 --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 2903.59 -- 기타
- 비환식탄화수소의 브롬화·요드화유도체
- 2903.61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 2903.62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 2903.69 -- 기타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 2903.77 --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 2903.78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 2903.79 -- 기타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2903.81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 2903.82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 2903.83 -- 미렉스(ISO)
- 2903.89 -- 기타
 -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2903.91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 2903.92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 · 디 · 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 2903.93 -- 펜타클로로벤젠(ISO)
- 2903.94 -- 헥사브로모비페닐
- 2903.99 -- 기타

이들은 탄화수소의 구조식에 있어서 1 이상의 수소 원자가 같은 수의 할로겐 원자(halogen atom)[플루오르(fluorine) · 염소(chlorine) · 브롬(bromine) · 요드(iodine)]로 치환되어 얻어지는 화합물이다.

(A)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 (1) **염화메탄(chloromethane)**[염화메틸(methyl chloride)] : 무색의 가스로서 일반적으로 철강제 실린더(cylinder)에 액화 상태로 제시하고 냉각제 · 마취제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이염화메(dichloromethane)**[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 독성의 무색 휘발성 액체로서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3) **클로로포름(chloroform)**[삼염화메탄(trichloromethane)] : 특이한 냄새를 가진 무색 휘발성 액체로서 마취제 · 용매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 무색 액체로서 소화기(fire-extinguishers)에 사용하거나, 황·기름·지방·바니시(vernish)·석유·수지 등의 용매로 사용한다.
- (5) **염화에탄(chloroethane)**[염화에틸(ethyl chloride)] : 특수 용기에 든 가스 상태나 액화 상태의 것으로서 ; 마취제로 사용한다.
- (6) **이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ISO)[1,2-이염화에탄(1,2-dichloroethane)] : 독성의 무색 액체로서 ; 용제(solvent)로 사용한다.
- (7) **1,2-이염화프로판(1,2-dichloropropane)**[이염화프로필렌(propylene dichloride)] : 무색 안정된 액체로서 클로로포름(chloroform)과 같은 냄새를 가지며 유기 합성이나 기름·지방·왁스·검(gum)·수지 등의 용제(solvent)로 사용한다.
- (8) **이염화부탄(dichlorobutan)**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염화 유도체의 혼합물인 염화파라핀(chloroparaffin) ; 인조 왁스의 특성을 갖는 고체의 염화파라핀은 **제3404호**에 분류하고, 액체 상태의 것은 **제3824호**에 분류한다.
- (b)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충전물로 만들거나 소화탄으로 만든 물품

(B)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 (1) **염화비닐(vinyl chloride)**[염화에틸렌(chloroethylene)] : 클로로포름(chloroform)의 냄새를 가진 기체로서 ; 철강제의 용기에 액체 상태로 제시하며 ; 제3904호의 폴리(비닐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삼염화에틸렌(trichloroethylene)** : 클로로포름(chloroform)의 냄새를 가진 무색 액체로서 ; 바니시(vernish)·기름·지방의 용제와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3) **사염화에틸렌(tetrachloroethylene)**[과염화에틸렌(perchloroethylene)] ; 무색 액체로서 드라이 클리닝(dry-cleaning) 용제로 사용한다.
- (4) **염화비닐리덴(vinylidene chloride)**

(C)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디플루오로메탄(HFC-32),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의 교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에 대한 「키갈리 개정의정서(Kigali Amendment)」에 따라 규제된다.

(D)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로-2-부텐(HFO-1336mzz). 수소불화올레핀(Hydrofluoroolefin, HFO)은 불포화 불화탄소(즉, 두 개의 탄소 원자 사이에 한 개의 이중 결합을 가진 분자)이다. 이중 결합의 존재 때문에 분자의 대기 중 수명(atmospheric life)이 매우 짧고 지구온난화지수(GWP : global warming potential)는 매우 낮다. 대다수의 HFO는 불포화 HFC이고 지구온난화지수가 4에서 9까지 범위이며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동식 공기조절기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HFO-1234yf는 지구온난화지수가 4이다.

(E) 비환식탄화수소의 브롬화(brominated) · 요드화(iodinated)유도체

비환식탄화수소의 브롬화(brominated) · 요드화(iodinated) 유도체

- (1) **브로모메탄(bromomethane)**[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 특수 용기에 가스나 액화 상태의 것으로서 ; 소화기(fire-extinguisher)에서 사용하며, 냉각제(refrigerant)로도 사용한다.
- (2) **브로모에탄(bromoethane)**[브롬화에틸(ethyl bromide)] : 클로로포름(chloroform)과 같은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3) **브로모포름(bromoform)** : 특유의 냄새를 갖는 무색 액체로서 ; 진정제(sedative)로 사용한다.
- (4) **브로모알릴(allyl bromide)**
- (5) **요드화메탄(iodomethane)**[요드화메틸(methyl iodide)]와 **요드화에탄(iodoethane)**[요드화에틸(ethyl iodide)] : 액체로서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6) **이요드화메탄(di-iodomethane)**[요드화메틸렌(methylene iodide)]
- (7) **요드포름(Iodoform)** : 특유의 냄새를 갖는 황색 가루이나 황색 결정 상태로서 방부제(antiseptic)로서 의약품에 사용한다.
- (8) **요드화알릴(allyl iodide)**[3-요드화프로펜(3-iodopropene)]

소화기용의 장전물로 만들거나 소화탄으로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813호)**.

**(F)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halogens)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hlorodifluoromethane)(HCFC-2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dichlorotrifluoroethane)(HCFC-123) ·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dichlorofluoroethane)(HCFC-141, 141b) ·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chlorodifluoroethane)(HCFC-142, 142b)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dichloropentafluoropropane)(HCFC-225, 225ca, 225cb)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bromochlorodifluoromethane)(Halon-1211) ·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bromotrifluoromethane)(Halon-1301) ·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dibromotetrafluoroethane)(Halon-2402)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CFC-11)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CFC-12)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CFC-113)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dichlorotetrafluoroethane)(CFC-114)과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chloropentafluoroethane)(CFC-115)의 상거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소화기용의 장전물로 만들거나 소화탄으로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813호)**.

**(G)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
(cycloterpenic hydrocarbon)의 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 (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exachlorocyclohexane)**[HCH(ISO)] : 린덴(lindane)(ISO, INN)을 포함한다. 흰색이나 노란색의 가루나 플레이크이며 ; 매우 강력한 살충제이다.
- (2) **시클로프로판(cyclopropane)이나 시클로부탄(cyclobutane)의 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 (3) **옥타클로로테트라히드로(octachlorotetrahydro)-4,7-엔도메틸렌인단(endomethyleneindane)** : 강력한 살충제이다.

- (4) “케이지(cage)” 구조를 가진 탄화수소의 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 예를 들면, 도데카클로로-펜타시클로(dodecachloro-pentacyclo) [5.2.1.0^{2,6} 0^{3,9}.0^{5,8}] 데칸(decane)
- (5)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es)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염화캄펜(chlorocamphene) · 염화보르닐(bornyl chloride) 등과 같은 것

(H) 방향족(芳香族)탄화수소의 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 (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 약간의 방향성(芳香性)을 지닌 인화성의 액체로서 ; 유기 합성에 사용하며 또한 바니시(varnish) · 수지와 역청 물질의 용제(溶劑 : solvent)로도 사용한다.
- (2) 오르토-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 무색 액체 상태
- (3) 메타-디클로로벤젠(*m*-dichlorobenzene) : 무색 액체 상태
- (4) 파라-디클로로벤젠(*p*-dichlorobenzene) : 백색의 결정체로서 살충제, 공기청정제나 염료 중간체로 사용한다.
- (5) 헥사클로로벤젠(ISO)과 펜타클로로벤젠(ISO) : 백색 바늘 모양으로 물에 녹지 않는다.
- (6) DDT(ISO) [클로페노탄(clofenotane)(INN), 1,1,1-트리클로로(trichloro)-2,2-비스(bis)(파라-클로로페닐(*p*-chlorophenyl))에탄 또는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 무색 결정체나 옅은 백색 가루 상태로 살충제이다.
- (7) 염화벤질(benzyl chloride) : 방향성(芳香性)의 무색 액체로서 최루성(催淚性)이 강하며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8) 모노클로로나프탈렌(monochloronaphthalene) : 유동성의 액체[알파(α)나 휘발성의 결정체 [베타(β)]로서 이들은 나프탈렌(naphthalene)의 냄새를 가지며 유기 합성 또는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 등으로 사용한다.
- (9) 1,4-디클로로나프탈렌(1,4-dichloronaphthalene) : 광택 있는 무색의 결정체이며 옥타클로로나프탈렌(octachloronaphthalene)은 광택있는 황색의 결정체로서 살충제로 사용한다.
혼합물이 아닌 액체 상태의 폴리클로로나프탈렌(polychloronaphthalene)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인조 왁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혼합물로서 고체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제3404호).
- (10) 브로모스티렌(bromostyrene)
- (11) 헥사브로모비페닐* : 전형적인 예는 2,2',4,4'.5,5'-헥사브로모비페닐*과 3,3'.4,4'.5,5'-헥사브로모비페닐이다. 무색에서 회백색인 고체이다.

이 호에서는 헥사브로모비페닐의 이성체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3824호)**. 또한 이 호에서는 염소화 유도체의 혼합물인 폴리클로로비페닐도 **제외하는데**, 인조 왁스의 성질을 지닌 고체형태의 것은 **제3404호**에, 액체 상태의 폴리클로로비페닐은 **제3824호**에 분류한다.

29.04 -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904.10 -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 2904.20 -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폰닐플루오라이드
- 2904.31 -- 과불화옥탄술폰산
- 2904.32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 2904.33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 2904.34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 2904.35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 2904.36 -- 과불화옥탄술폰닐플루오라이드
 - 기타
- 2904.91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 2904.99 -- 기타

(A)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탄화수소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같은 수의 술폰기(sulpho group)(-SO₃H)로 치환된 것으로서 ;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폰산(sulphonic acid)으로 불려진다. 이 호에는 또한 술폰산염(salt of sulphonic acid)과 술폰산의 에틸에스테르(ethyl ester)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5호나목 참조].

(1) 비환식 탄화수소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a) 에틸렌 술폰산(ethylenesulphonic acid)*
- (b) 에탄 술폰산(ethanesulphonic acid)

(2) 환식탄화수소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a) 벤젠술폰산(benzenesulphonic acid)
- (b) 톨루엔술폰산(toluenesulphonic acid)[때로는 벤질술폰산(benzylsulphonic acid)으로 잘못 부르기도 한다]
- (c) 크실렌술폰산(xylenesulphonic acid)
- (d) 벤젠디술폰산(benzenedisulphonic acid)
- (e) 나프탈렌술폰산(naphthalenesulphonic acid)

(B)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탄화수소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같은 수의 니트로기(nitro group)(-NO₂)로 치환된 것

(1) 비환식탄화수소의 니트로화(nitrated) 유도체

- (a) 니트로메탄(nitromethane)
- (b) 니트로에탄(nitroethane)
- (c) 니트로프로판(nitropropane)
- (d) 트리니트로메탄(trinitromethane)*등

(2) 환식탄화수소의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a) **니트로벤젠(nitrobenzene)**[미르베인유(oil of mirbane)] : 광택이 나는 황색의 결정체나 황색의 액체로서 쓴 아몬드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 향료·비누제조·유기 합성과 변성제(變性劑 : denaturing agent) 등으로 사용한다.
- (b) **메타디니트로벤젠(*m*-dinitrobenzene)** : 무색의 바늘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 ; 폭약의 제조에 사용한다.
- (c) **니트로톨루엔(nitrotoluene)**[오르토(*o*)-·메타(*m*)-와 파라(*p*)-]
- (d) **2,4-디니트로톨루엔(2,4-dinitrotoluene)** : 결정체로서 폭약 제조에 사용한다.
- (e) **2,4,6-트리니트로톨루엔(2,4,6-trinitrotoluene)** : 강력한 폭약
이들 유도체의 혼합조제폭약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602호).
- (f) **5-터셔리-부틸-2,4,6-트리니트로메타크실렌(5-*tert*-butyl-2,4,6-trinitrometaxylene)**
[크실렌머스크(xylene musk)] ; 향료에 사용한다.
- (g) **니트로크실렌·3-터셔리-부틸-2,6-디니트로-파라-시멘(시멘머스크)·니트로나프탈렌 등**

(C)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탄화수소의 한 개 이상의 수소 원자를 같은 수의 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로 치환한 것

- (1) **니트로소벤젠(nitrosobenzene)**
- (2) **니트로소톨루엔(nitrosotoluene)**[오르토(*o*)-·메타(*m*)-와 파라(*p*)-]

(D) 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

탄화수소의 유도체이며 이들의 분자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술폰기(sulpho groups)(-SO₃H), 이들의 염이나 에틸에스테르(ethyl ester)와 하나나 그 이상의 할로젠기나 그 밖의 할로술폰닐기(halosulphonyl group)를 함유하고 있다.

- (1) **클로로(chloro)-, 브로모(bromo)-와 요도벤젠술폰산(iodobenzenesulphonic acid)**[오르토(*o*)-·메타(*m*)-와 파라(*p*)-]*
- (2) **클로로(chloro)-, 브로모(bromo)-와 요도벤젠디술폰산(iodobenzenedisulphonic acid)**
- (3) **클로로나프탈렌술폰산(chloronaphthalenesulphonic acid)**
- (4) **염화파라톨루엔술폰닐(*p*-toluenesulphonyl chloride)**
- (5)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 PFOS,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폰닐플루오라이드(PFOSF)의 제조와 사용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과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통제한다(제2922호, 제2923호, 제2935호, 제3808호와 제3824호도 참조).

(E) 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

탄화수소의 유도체이며 이들의 분자는 하나나 그 이상의 니트로기(nitro group)(-NO₂)와 하나나 그 이상의 할로젠기(group of halogen)를 함유하고 있다.

- (1)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trichloronitromethane)이나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2) **요도트리니트로메탄(iodotrinitromethane)**
- (3) **클로로니트로메탄(chloronitromethane)**
- (4) **브로모니트로메탄(bromonitromethane)**
- (5) **요도니트로메탄(iodonitromethane)**

- (6) 클로로니트로벤젠(chloronitrobenzene)
- (7) 클로로니트로톨루엔(chloronitrotoluene)

(F)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

이들은 분자가 하나 이상의 니트로기(nitro group)(-NO₂)와 하나 이상의 술폰기(sulpho group)(-SO₃H)나 이들의 염이나 에틸에스테르를 함유하고 있는 탄화수소의 유도체이다.

- (1) 니트로벤젠술폰산(nitrobenzenesulphonic acid)과 2- · 3니트로벤젠술폰산(di-and trinitrobenzenesulphonic acids)
- (2) 니트로톨루엔술폰산(nitrotoluenesulphonic acid)과 2- · 3니트로톨루엔술폰산(di-and trinitrotoluenesulphonic acid)
- (3) 니트로나프탈렌술폰산(nitronaphthalenesulphonic acid)
- (4) 디니트로스틸벤디술폰산(dinitrostilbenedisulphonic acid)

(G) 니트로술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와 그 밖의 복합 유도체

이들은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종류의 복합 유도체로서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니트로기(nitro groups)(-NO₂), 술폰기(sulpho groups)(-SO₃H)나 이들의 염, 에틸에스테르(ethyl esters)와 하나 이상의 할로겐기(groups of halogens)를 가지는 탄화수소 유도체[예: 클로로니트로벤젠(chloronitrobenzenes)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클로로니트로톨루엔(chloronitrobenzenes)의 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 등]

제2절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05호 - 제2906호)

29.05 -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 1가알코올

2905.11 -- 메탄올(메틸알코올)

2905.12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2905.13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2905.14 -- 그 밖의 부탄올

2905.16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2905.17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2905.19 -- 기타

- 불포화 1가알코올

2905.22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2905.29 -- 기타

- 2가알코올

2905.31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2905.39 -- 기타

-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 -- 2-에틸-2-(히드록시메틸) 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2905.42 -- 펜타에리트리톨

2905.43 -- 만니톨

2905.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2905.45 -- 글리세롤

2905.49 -- 기타

-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 에스클로비놀(INN)

2905.59 -- 기타

비환식알코올은 하나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hydroxyl group)로 치환하여 얻어진 비환식탄화수소의 유도체이다. 이들은 산소화합물로서 산(acid)과 반응하면 에스테르(ester)로 알려진 화합물이 생성된다.

알코올에는 1차 알코올($-CH_2OH$ 기의 성질을 가지는 것)·2차 알코올($>CHOH$ 기의 성질을 가지는 것)·3차 알코올($>COH$ 기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비환식알코올과 그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니트로술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나 그 밖의 복합 유도체[예: 글리세롤(glycerol)의 모노클로로히드린(monochlorohydrin),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의 모노클로로히드린]를 분류한다. 중아황산알데히드(aldehyde-bisulphite) 화합물과 중아황산케톤(ketone-bisulphite) 화합물은 알코올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로 분류한다[예: 중아황산나트륨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sodium bisulphite)·중아황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sodium bisulphite)·중아황산나트륨발레르알데히드(valeraldehyde sodium bisulphite)·중아황산나트륨아세톤(acetone sodium bisulphite)]. 이 호에는 이 호의 알코올과 에탄올의 금속알코올레이트(metal alcoholate)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순도(純度 : purity)에 상관없이 에탄올[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을 **제외한다(제2207호와 제2208호** 해설 참조).

(A) 포화 1가 알코올

- (1) **메탄올(methanol)**[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 목재를 건류하거나 합성에 의하여 얻는다. 순수한 메탄올(methanol)은 유동성·무색·인화성 액체로서 독특한 냄새를 가지며; 유기 합성·용매·염료공업과 폭약·약품 제조 등에 사용한다. 목재의 건류에서 얻어진 목(木)나프타(wood naphtha)[가공하지 않은 메틸알코올(crude methyl alcohol)]는 **제외한다(제3807호)**.
- (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propan-1-ol(propyl alcohol) and propan-2-ol(isopropyl alcohol)]** : 무색 액체이며 후자는 프로필렌(propylene)으로부터 합성되며 아세톤·메타크릴레이트(methacrylates)의 제조·용제 등에 사용한다.
- (3) **1-부탄올(butan-1-ol)**[노르말-부틸알코올(*n*-butyl alcohol)]과 **그 밖의 부탄올(butanol)** [4종의 이성체(isomer)] : 무색 액체로서 유기 합성용과 용제로 사용한다.
- (4) **펜탄올(pentanol)**[아밀알코올(amy alcohol)]과 **그 이성체** : 8종의 이성체가 있으며 발효 아밀알코올(fermentation amy alcohol)은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을 정류할 때 얻어지는 퓨젤 유(fusel oil)[제3824호의 그레인 오일(grain oil)·당밀 유·포테이토 오일 등으로 알려져 있다]로부터 주로 얻어진다. 또한 아밀알코올(amy alcohol)은 석유의 분해에서 얻어지는 탄화수소가스로부터 합성된다.
- (5) **헥산올(hexanol)**과 **헵탄올(heptanol)**(헥실알코올과 헵틸알코올)
- (6) **옥탄올(octanol)**(옥틸알코올)[**octanol(octyl alcohol)**]과 그 이성체
- (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과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이 호에는 순도(純度) 90% 미만(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의 지방알코올은 **제외한다(제3823호)**.

(B) 불포화 1가 알코올

- (1)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2) 에틸프로필알릴알코올(ethylpropylallyl alcohol)[2-에틸-2-헥센-1-올(2-ethyl-2-hexen-1-ol)]
- (3) 올레일알코올(oleyl alcohol)
- (4) 비환식테르펜알코올(acyclic terpene alcohol)[예: 피톨(phytol) : 테르펜알코올(terpen alcohol)은 쉽게 하이드로-방향족(芳香族) 화합물로 전환되며 특정의 정유(essential oil) 속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게라니올(geraniol) · 시트로넬롤(citronellol) · 리날로올(linalool) · 로디놀(rhodinol) · 네롤(nerol) 등으로서 향료에 사용한다.

(C) 2가 알코올과 그 밖의 다가알코올

(I) 2가 알코올

- (1)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에탄디올(ethanediol) : 무색 시럽 상태의 액체로서 약간의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며 니트로글리콜(nitroglycol)(폭약) 제조 · 바니시(vernish)의 용제(溶劑) · 부동(不凍 : anti-freeze)제나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프로판-1,2-디올(propane-1,2-diol) : 무색 점성이 있는 흡습성 액체

(II) 그 밖의 다가알코올

- (1) 글리세롤(프로판-1,2,3-트리올)[glycerol(propane-1,2,3-triol) : 글리세롤(glycerol) [글리세린(glycerine)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glycerol)의 정제 (예: 증류 · 이온교환정제에 의해)나 프로필렌(propylene)으로부터 합성으로 얻어지기도 한다.

글리세롤은 감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무색과 무취이나 때로는 약간의 황색빛을 띠는 투명일 때도 있다.

글리세롤이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순도(純度) 95% 이상(건조물로 계산한 중량)이어야 하며 저 순도의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crude glycerol)]은 제외한다(제1520호).

- (2)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2-ethyl-2(hydroxymethyl)propane-1,3-diol][트리메틸올프로판(trimethylolpropane)] : 바니시(vernish) · 알키드수지 · 합성 건성유 · 우레탄 폼과 코팅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 (3) 펜타에리트리톨(pentaerythritol) :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폭약과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한다.
- (4) 만니톨(mannitol)* : 백색 결정성 가루나 알갱이 모양으로서 식물계[프락시너스 오르너스(*Fraxinus ornus*)의 수액]에 존재하며 ; 합성으로도 얻는다. 완하제와 폭약(mannitol hexanitrate)의 제조에 사용한다.
- (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sorbitol)] : 백색 결정성의 흡습성 가루이며 향료로 사용하고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제조(의약품) · 계면활성제 제조 · 글리세롤(glycerol)의 대용품과 습윤제(예: 습기 조절제)로 사용한다.
- (6) 펜탄트리올(pentanetriol) · 헥산트리올(hexanetriol) 등

이 호에는 제3824호의 소르비톨(sorbitol)은 제외한다.

**(D) 비환식 알코올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 (1) **함수클로랄(chloral hydrate)**[$\text{CCl}_3\text{CH}(\text{OH})_2$][2,2,2-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1,1-디올(diol)] : 무색 결정체로서 독성이 있으며 ; 최면제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트리클로로터셔리부틸알코올(trichloro-tertiary-butyl alcohol)** ;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 (3) **에스클로비놀(ethchlorvynol)** : 향정신성 물질-제29류 끝의 목록 참조

29.06 -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2906.11 - 멘톨

2906.12 --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2906.13 -- 스테롤과 이노시톨

2906.19 -- 기타

- 방향족(芳香族)

2906.21 -- 벤질알코올

2906.29 -- 기타

(A)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알코올(cycloterpenic alcohol)과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 (1) **멘톨(menthol)*** : 박하유(薄荷油 : peppermint oil)의 주원료인 제2차 알코올로서 결정체이며 ; 방부제 · 국부마취제로 사용하며 또한 코(鼻)의 충혈부분 제거제로도 사용한다.
- (2) **시클로헥산올(cyclohexanol) · 메틸시클로헥산올(methylcyclohexanol)과 디메틸시클로헥산올(dimethylcyclohexanol)** : 장뇌와 같은 냄새를 가지며 바니시(vernish)의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디메틸시클로헥산올은 비누 제조에 사용한다.
- (3) **스테롤(sterol)** : 지환식 알코올이며, 퍼히드로(perhydro)-1,2-시클로펜타노페난트렌(cyclopentanophenanthrene) 탄화수소에서 유도된 포화나 불포화 구조로서 3번째 탄소에 수산기와 10, 13번째 탄소에 메틸기(methyl group), 17번째 탄소에는 8~10개의 탄소 측쇄를 갖는다. 이들은 동물계[동물성 스테롤(zosterol)]와 식물계[식물성 스테롤(phytosterol)]에 모두 풍부하게 존재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cholesterol)**이며 이는 가축의 척수와 울그리스(wool grease)에서 얻어지고 ; 또한 쓸개즙에서도 얻어지며 알의 노른자위으로부터 레시틴(lecithin)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도 얻어지는 광택성의 무색 태블릿(tablet) 모양으로서 물에 녹지 않는다.

이 호에는 균류(버섯)와 맥각(spurred rye)에 존재하며 자외선을 조사(照射 : irradiation)하여 비타민 D₂를 생성하는 프로비타민인 엘고스테롤(ergosterol)을 **제외한다**. 엘고스테롤과 비타민 D₂는 모두 **제2936호**에 해당한다.
- (4) **이노시톨(inositol)** :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서 9개의 이성체가 있으며 백색 결정 모양이다. 동식물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 (5) **테르피네올(terpineol)** : 라일락 등과 같이 향료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알코올이다. 천연적으로 여러 정유(essential oil)[cardamom유 · sweet orange유 · 오렌지화유 · petit-grain유 · sweet marjoram유 · 육두구(肉荳蔻 : nutmeg)유 · 터펜틴(turpentine)유 · 체리라우렐(cherry-laurel)유와 장뇌(camphor)유] 중에 유리상태(遊離狀態 : free state)나 에스테르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상거래 관습상의 테르피네올(terpineol)은 이성체의 혼합물이나 이 호에 분류한다 [제29류의 주 제1호나목 참조]. 무색의 오일 형태의 액체로서 살세균제 등으로 사용한다. 고체의 이성체는 의약용으로 사용하고 살세균용으로도 사용한다.

- (6) **테르핀(terpin)** : 합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백색 결정체이다. 수화 테르핀(terpin hydrate)은 터펜틴(turpentine)으로부터 얻어지고 방향성(芳香性)의 무색 결정체이다. 의약품과 테르피네올(terpineol) 제조에 사용한다.
- (7) **용뇌(borneol)**[보르네오 장뇌(Borneo camphor)] : 케톤장뇌(ketone camphor)에 상당하는 알코올로서 외관과 냄새는 천연(natural) 장뇌와 같으며 백색 결정체나 갈색 덩어리이며 ; 실온(室溫)에서는 휘발성이 있다.
- (8) **이소보르네올(isoborneol)** : 얇은 판 모양의 결정체로서 알파피넨(alphapinene)에서 장뇌(camphor)로 전환되는 과정에 중간 단계의 산물이다.
- (9) **산타롤(santalol)** : 백단유(白檀油 : sandalwood oil)의 중요 구성성분이다.

**(B) 방향족(芳香族)알코올과
그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방향족(芳香族)알코올은 수산기(hydroxyl group)(-OH)를 함유하고 있으며 방향족(芳香族)고리에 결합된 것이 아니고 측쇄에 결합되어 있다.

- (1)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 자스민과 월하향의 정유(essential oil) 내에 유리상태(遊離狀態 : free state)나 에스테르(ester)로 존재하는 외에 소합향(storax)과 톨루발삼(balsam of Tolu)내에 에스테르(ester)로 존재한다. 상쾌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서 ; 유기 합성 · 바니시(vernish) · 염료와 인조 향료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 (2) **2-페닐에탄올(2-phenylethanol)** : 장미향 정유(attar of rose)의 주성분을 형성하는 액체
- (3) **3-페닐프로판올(3-phenylpropanol)** : 소합향 · 스마트라벤조인검(Sumatra gum benzoin) · 카시아(cassia)유와 중국계피유(Chinese cinnamon oil)에 존재하며 ; 농후하고 약한 히아신스(hyacinth)의 냄새를 지닌 밀도가 높은 무색의 액체이다.
- (4) **신나밀알코올(cinnamyl alcohol)** : 소합향액(liquid storax)과 페루발삼(balsam of Peru)중에 존재하며 히아신스(hyacinth)의 냄새를 지닌 바늘 모양의 결정체이다.
- (5) **디페닐메탄올(diphenylmethanol)** : 바늘 모양의 결정체
- (6) **트리페닐메탄올(triphenylmethanol)** : 결정체로서 이 알코올은 아우린(aurine) · 로사닐린(rosaniline)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염료군(群)의 모체 물질

*
* *

이 호의 목적에 따라 중아황산알데히드(aldehyde-bisulphite) 화합물과 중아황산케톤(ketone-bisulphite) 화합물은 알코올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로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환식알코올의 금속 알코올레이트(metal alcoholate)를 분류한다.

제 3 절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07호 - 제2908호)

29.07 - 페놀과 페놀알코올

- 1가페놀

2907.11 -- 페놀(석탄산)과 그 염

2907.12 -- 크레졸과 그 염

2907.13 --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2907.15 -- 나프톨과 이들의 염

2907.19 -- 기타

-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 -- 레조르시놀과 그 염

2907.22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2907.23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2907.29 -- 기타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al)(-OH)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수소 원자 한 개가 치환되면 1가 페놀[모노페놀(monophenols)]이라 하며 ; 두 개 이상의 수소 원자가 치환되면 다가페놀(폴리페놀)[polyhydric phenols(polyphenols)]이라 한다.

이러한 치환은 다시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벤젠고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 첫 번째 경우(하나의 벤젠고리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단핵 페놀(mononuclear phenol)이 얻어지고, 두 번째 경우(두 개 이상의 벤젠고리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다핵 페놀(polynuclear phenol)이 얻어진다.

수산기(hydroxyl group)는 벤젠동족계(benzene homologue)에서 치환체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 톨루엔(toluene)의 경우 페놀동족계(phenol homologue)로서 크레졸(cresol)이 얻어지며, 크실렌(xylen)의 경우 크실레놀(xylenol)이 얻어진다.

이 호는 페놀(phenol)이나 페놀알코올(phenol-alcohol)의 염과 금속 알코올레이트(metal alcoholate)도 포함한다.

(A) 단핵 1가 페놀(phenol)

- (1) **페놀(phenol)**[히드록시벤젠(hydroxybenzene)](C_6H_5OH) : 콜타르(coal tar)의 분별증류나 합성에 의하여 얻어지며 특이한 냄새를 가진 백색의 결정체로서 빛에 노출되면 적색으로 변하며 또한 용액인 경우도 있다. 이것은 약제에서 사용하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또한 폭약·합성수지·플라스틱·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염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페놀(phenol)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순도(純度)가 전 중량의 90% 이상이어야만 한다. 순도가 그 미만인 페놀은 **제외한다(제2707호)**.

- (2) **크레졸(cresol)**($\text{CH}_3\text{C}_6\text{H}_4\text{OH}$)* : 톨루엔(toluene)으로부터 유도된 페놀(phenol)은 콜타르유(coal tar oil)속에 여러 가지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오르토크레졸(*o*-cresol)은 페놀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는 백색 결정의 가루로서 조해성(潮解性)이 있고 오래 묵으면 갈색으로 변하며 ; 메타크레졸(*m*-cresol)은 크레오소트(cresote)의 냄새를 갖는 굴절성이 강한 무색이나 황색 기름 같은 액체이며 ; 파라크레졸(*p*-cresol)은 무색 결정성의 덩어리로서 빛을 받으면 적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며 ; 페놀(phenol)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단일하거나 혼합된 크레졸(cresol)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크레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 이상이어야 한다(모든 크레졸 이성체를 합산한다). 순도(純度)가 그 미만인 크레졸은 제외한다(제2707호).

- (3) **옥틸페놀(octylphenol) · 노닐페놀(nonylphenol)과 이들의 이성체**

- (4) **크실레놀(xylenol)**($(\text{CH}_3)_2\text{C}_6\text{H}_3\text{OH}$) : 크실렌(xylene)의 페놀(phenol)유도체로서 6개의 이성체가 알려져 있으며 ; 콜타르유(coal tar oil)에서 얻어진다.

단일하거나 혼합된 크실레놀(xylenol)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크실레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 이상이어야 한다(모든 크실레놀 이성체를 합산한다). 순도(純度)가 그 미만인 크실레놀은 제외한다(제2707호).

- (5) **티몰(thymol)**[5-메틸-2-이소프로필페놀(5-methyl-2-isopropylphenol)] : 백리향유(thyme oil)에 존재하며 백리향의 냄새를 지닌 무색 결정체로서 ; 의약 · 향료 등에 사용한다.

- (6) **카르바크롤(carvacrol)**[2-메틸-5-이소프로필페놀(2-methyl-5-isopropylphenol)] : 오리가눔유(origanum oil)로부터 얻어지는 티몰(thymol) 이성체로서 ; 찌르는 듯한 냄새를 지닌 점조성 액체이다.

(B) 다핵 1가 페놀(phenols)

- (1) **나프톨(naphthol)**($\text{C}_{10}\text{H}_7\text{OH}$)* : 나프탈렌(naphthalene)으로부터 유도된 페놀류로서 두 가지의 이성체가 있다.

(a) **알파나프톨(α -naphthol)** : 페놀(phenol)을 약간 연상케 하는 불쾌한 냄새를 지닌 무색 광택 있는 바늘 모양 결정체로서, 갈색의 덩어리 모양이나 백색 가루 상태이다. 이는 독성이 있으며 유기 합성(염료 등)에 사용한다.

(b) **베타나프톨(β -naphthol)** : 광택성의 무색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결정 상태의 가루로서 백색이나 옅은 분홍색이며 페놀(phenol)의 냄새가 약간 있다. 알파나프톨(α -naphthol)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의약용과 고무산화방지제 등으로 사용한다.

- (2) **오르토펜일페놀(*o*-phenylphenol)**

(C) 다가페놀(polyphenol)

- (1) **레조르시놀(resorcinol)**[메타-디히드록시벤젠(*m*-dihydroxybenzene)]* : 2가 페놀(phenol)로서 ; 바늘 모양이나 태블릿(tablet) 모양의 무색 결정체이며 ; 약간의 페놀(phenol) 냄새를 지니고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합성염료 · 폭약제조와 의약과 사진용에 사용한다.

- (2) **히드로퀴논(hydroquinone)**[퀴놀(quinol), 파라-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 작고 반짝이는 결정질 플레이크(flake) 모양이며 유기염료의 제조 · 의약과 사진용이나 특히 고무 제조의 산화방지제로 사용한다.

- (3)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4,4'-isopropylidenediphenol)**[비스페놀 에이(bisphenol A), 디페닐올프로판(diphenylolpropane)]* : 백색 플레이크(flake) 모양
- (4) **피로카테콜(pyrocatechol)**[오르토-디히드록시벤젠(*o*-dihydroxybenzene)] : 무색 광택성 결정질의 바늘 모양이나 태블릿(tablet) 모양으로 약간 페놀(phenol) 냄새가 있으며, 의료용품과 사진용품 제조에 사용한다.
- (5) **헥실레조르시놀(hexylresorcinol)**
- (6) **헵틸레조르시놀(heptylresorcinol)**
- (7) **2,5-디메틸히드로퀴논(2,5-dimethylhydroquinone)**[2,5-디메틸퀴논(2,5-dimethylquinol)]
- (8) **피로갈롤(pyrogallol)** : 작은 비늘 모양의 백색 결정 가루로서 가볍고 냄새가 없으며 ; 공기와 빛에 쉽게 갈색으로 변하고 독성이 있다. 매염제(媒染劑 : mordant) · 염료와 사진용 등으로 사용한다.
- (9) **플로로글루시놀(phloroglucinol)** : 무색의 굵은 결정체이며 수용액은 형광색이 나며 ; 화학 분석 시약 · 의약 · 사진용 등으로 사용한다.
- (10) **히드록시히드로퀴논(hydroxyhydroquinone)**[1,2,4-트리히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 무색 미결정이나 가루로서 빛에 노출되면 검게 변한다.
- (11) **디히드록시나프탈렌(dihydroxynaphthalene)**(C₁₀H₆(OH)₂) : 나프탈렌(naphthalene) 분자 고리에 두 개의 수소원자가 두 개의 수산기(hydroxyl group)에 의해서 치환됨으로써 얻어지는 10종 화합물의 군(群)이다. 이들 일부는 염료 제조에 사용한다.

(D) 페놀 알코올(phenol-alcohol)

이들은 벤젠(benzene) 고리 상의 수소원자 하나가 한 개의 페놀성(phenolic) 수산기(hydroxyl group)로 치환되고 벤젠 고리에 있지 않은 다른 한 개의 수소원자는 알코올성(alcoholic) 수산기(hydroxyl group)로 치환된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유도체이며 따라서 페놀(phenol)과 알코올의 양측성질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실알코올(salicyl alcohol)**[살리제닌(saligenin)](HOC₆H₄CH₂OH)로서 백색 결정이며 진통제와 해열제로서 의약품에 사용한다.

29.08 -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산화유도체

-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 -- 펜타클로로페놀(ISO)

2908.19 -- 기타

- 기타

2908.91 -- 디노셉(ISO)과 그 염

2908.92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ISO)]과 그 염

2908.99 -- 기타

이들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할로겐기(halogen group) · 술폰기(sulpho group)(-SO₃H), 니트로기(nitro group)(-NO₂)나 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나 이들의 복합기와 치환하여 얻어지는 페놀(phenol)과 페놀알코올(phenol-alcohol)의 유도체이다.

(A)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1) **오르토클로로페놀(*o*-chlorophenol)** : 강한 냄새를 지닌 액체
- (2) **메타클로로페놀(*m*-chlorophenol)** : 무색결정체
- (3) **파라클로로페놀(*p*-chlorophenol)** : 불쾌한 냄새를 지닌 피상의 결정체이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물품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예: 염료).

- (4) **파라-클로로-메타-크레졸(*p*-chloro-*m*-cresol)**[4-클로로-3-메틸페놀(4-chloro-3-methylphenol)] : 무취의 소독제로서 물에 약간 녹으며 비누에 의해 용이하게 유화된다.
- (5) **클로로히드로퀴논(chlorohydroquinone)**[클로로퀴논(chloroquinol)]

(B)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1) **페놀술폰산(phenolsulphonic acid)**(HOC₆H₄SO₃H) : 페놀(phenol)을 술폰화(sulphonated)함으로써 얻어진다.
- (2) **나프톨술폰산(naphtholsulphonic acid)** : 나프톨(naphthol)을 직접 술폰화(sulphonated)하거나 합성방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들은 염료의 제조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화합물을 구성한다. 그 주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 (a) **1-나프톨-4-술폰산(1-naphthol-4-sulphonic acid)**(Neville-Winther acid) : 광택성의 투명한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황백색의 가루이다.
 - (b) **2-나프톨-6-술폰산(1-naphthol-6-sulphonic acid)**(Schaeffer-acid) : 옅은 핑크백색의 가루
 - (c) **2-나프톨-7-술폰산(2-naphthol-7-sulphonic acid)**(F acid) : 백색 가루
 - (d) **1-나프톨-5-술폰산(1-naphthol-5-sulphonic acid)** : 조해성의 결정체
 - (e) **2-나프톨-8-술폰산(2-naphthol-8-sulphonic acid)**(crocein acid) : 황백색의 가루

(C)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1) 오르토(*o*)-·메타(*m*)-·파라(*p*)-**니트로페놀(nitrophenol)**($\text{HOC}_6\text{H}_4\text{NO}_2$) : 황색의 결정체로서 ; 유기 합성염료와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text{HOC}_6\text{H}_3(\text{NO}_2)_2$) : 결정질의 가루로서 ; 폭약·황화 염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 (3) **트리니트로페놀(trinitrophenol)**[피크르산(picric acid)]($\text{HOC}_6\text{H}_2(\text{NO}_2)_3$) : 광택성의 황색 결정체로서 냄새가 없으며 독성이 있고 화상의 치료와 폭약으로 사용하며 ; 그 염은 피크르산염(picrate)으로 알려져 있다.
- (4) **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initro-*o*-cresol)**
- (5) **트리니트로크실레놀(trinitroxyleneol)**

(D)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 (1) 오르토(*o*)-·메타(*m*)-·파라(*p*)-**니트로소페놀(nitrosophenol)** : 니트로소페놀(nitrosophenol)이 퀴논옥심(quinone oxim)의 호변체(互變體 : tautomeric form) 중에서 반응한다는 사실만으로 이것들을 이 호에 분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니트로소나프톨(nitrosonaphthol)**
-

제4절

에테르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 · 3 원고리의 에폭시드 · 아세탈 ·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
유도체

2909.11 -- 디에틸에테르

2909.19 -- 기타

2909.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3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
소화유도체

2909.41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2909.43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2909.44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2909.49 -- 기타

2909.5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A) 에테르(ether)

에테르(ether)는 수산기의 수소원자가 탄화수소기[알킬(alkyl)이나 아릴(aryl)]로 치환된 알코올이나
페놀(phenol)로 간주하며 일반식은(R-O-R¹)이며 R과 R¹은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다.

이들 에테르(ether)는 매우 안정한 중성 물질이다.

탄화수소의 기가 비환식계열에 속한다면 에테르(ether)도 역시 비환식이며 ; 환식기는 환식에테르
(cyclic ether)가 된다.

비환식계열의 첫 번째 에테르는 가스 상태이며 그 밖의 것은 에테르의 특유의 냄새를 갖는 휘발성
액체이며 ; 탄소수가 많은 것은 액체나 고체이다.

(I) 대칭비환식 에테르(symmetrical acyclic ether)

- (1) **디에틸에테르(diehtyl ether)(C₂H₅OC₂H₅)** : 특수하게 타는 듯한 냄새를 지닌 무색 굴절성의 액체로서 ; 휘발성이 강하고 가연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마취제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디(클로로에틸)에테르[di(chloroethyl) ether]나 디클로로디에틸에테르(dichlorodiethyl ether)**
- (3) **디이소프로필 에테르(di-isopropyl ether)**
- (4) **디부틸에테르(dibutyl ether)**
- (5) **디펜틸에테르(디아밀에테르)[dipentyl ether(diamyl ether)]**

(II) 비대칭비환식 에테르(non symmetrical acyclic ether)

- (1) **에틸메틸에테르(ethyl methyl ether)**
- (2) **에틸이소프로필에테르(ethyl isopropyl ether)**
- (3) **부틸에틸에테르(butyl ethyl ether)**
- (4) **펜틸에틸에테르(pentyl ethyl ether)**

(III) 포화지환식(cyclanic) · 불포화지환식(cyclenic)과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ic) 에테르

(IV) 방향족(芳香族) 에테르(aromatic ether)

- (1) **아니솔(anisole)(C₆H₅OCH₃) (메틸페닐에테르)(methyl phenyl ether)** : 상쾌한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서 ; 유기 합성 (예: 합성향료) 원료로 쓰이며 용제(溶劑 : solvent)와 구충제로도 사용한다.
- (2) **페넨톨(에틸페닐에테르)[phenetole(ethyl phenyl ether)](C₆H₅OC₂H₅)**
- (3) **디페닐에테르(diphenyl ether)(C₆H₅OC₆H₅)** : 제라늄(geranium)과 같은 냄새를 지닌 무색의 바늘 모양 결정체로서 ; 향료에 사용한다.
- (4) **1,2-디페녹시에탄(에틸렌글리콜 디페닐에테르)[1,2-diphenoxyethane(ethylen glycol diphenyl ether)]**
- (5) **아네톨(anethole)** : 아니스열매의 기름(油 : aniseed oil)에 함유되어 있다. 섭씨 2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작은 결정체이며 ;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강한 아니스열매 기름의 냄새를 지닌 유동성의 액체이다.
- (6) **디벤질에테르(dibenzyl ether)**
- (7) **니트로페넨톨(nitrophenetole)** : 페넨톨(phenetole)의 니트로화(nitrated) 유도체로서 오르토니트로페넨톨(*o*-nitrophenetole)은 황색의 기름(油)이고 파라니트로페넨톨(*p*-Nitrophenetole)은 결정이다.
- (8) **니트로아니솔(nitroanisole)** : 아니솔(anisole)의 니트로화(nitrated) 유도체로서 오르토니트로아니솔(*o*-nitroanisole)은 액체이고 메타(*m*-)와 파라니트로아니솔(*p*-Nitroanisole)은 얇은 판 모양의 결정체이다. 트리니트로아니솔(trinitroanisole)은 매우 강한 폭발성 성질이다.
- (9) **2-터셔리-부틸-5-메틸-4,6-디니트로아니솔(머스크 암브레트)[2-tert-butyl-5-methyl-4,6-dinitroanisole(musk ambrette)]** : 암브레트기름(ambrette oil)과 천연 사향의 향을 조합한 황색의 결정체

- (10) **베타-나프틸메틸과 에틸에테르**(인조 네롤리 유)[β -naphthyl methyl and ethyl ether (artificial neroli oil)] : 오렌지화유와 비슷한 냄새를 지닌 무색의 결정 가루이다.
- (11) **메타크레졸과 부틸메타크레졸의 메틸에테르**(methyl ether of *m*-cresol and butyl-*m*-cresol)
- (12) **페닐톨릴에테르**(phenyl tolyl ether)
- (13) **디톨릴에테르**(ditolyl ether)
- (14) **벤질에틸에테르**(benzyl ethyl ether)

(B) 에테르-알코올(ether-alcohol)

이들은 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s)이나 페놀알코올(phenol-alcohols)이 페놀성 수산기의 수소[페놀알코올(phenol-alcohols)의 경우]나 한 개의 알코올성 수산기의 수소[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s)의 경우]가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로 치환되어 유도된 것이다.

- (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2,2'-oxydiethanol(diethylene glycol, digol)] : 무색의 액체로서 ; 유기 합성원료 · 검(gum) · 수지의 용제(溶劑 : solvent) · 폭약 제조와 플라스틱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이나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glycol)의 **모노메틸**(monomethyl) · **모노에틸**(monoethyl) · **모노부틸**(monobutyl)과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monoalkylether)
- (3)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이나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의 **모노페닐에테르**(monophenyl ether)
- (4) **아니실알코올**(anisyl alcohol)
- (5) **구아이에토린**(guaietolin)(INN)(글리세롤모노(2-에톡시페닐)에테르)[glycerol mono(2-ethoxyphenyl)ether]와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INN)[글리세롤 모노(2-메톡시페닐)에테르][glycerol mono(2-methoxyphenyl)ether]

(C) 에테르페놀(ether-phenol)과 에테르알코올페놀(ether-alcohol-phenol)

이들은 2가페놀(dihydric phenols)이나 페놀알코올(phenol alcohols)이 알코올성 수산기(alcohol hydroxyl group)의 수소[페놀알코올의 경우]나 한 개의 페놀성 수산기(phenol hydroxyl group)의 수소[디히드릭 페놀(dihydric phenols)의 경우]가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로 치환하여 유도된 것이다.

- (1) **구아이야콜(guaiacol)*** : 너도밤나무 타르(beech-wood tar)에 존재하며 목(木) 크레오소트(wood creosote)의 주성분이다. 특수한 방향성(芳香性)을 지닌 무색의 결정체이나 ; 한 번 용해하면 액체 상태로 유지된다. 의약과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술포구아이야콜**(INN) (구아이야콜술포산칼륨)(potassium guaiacolsuphonate) : 미세 가루로서 의약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 (3) **오이게놀(eugenol)** : 정향(clove)으로부터 얻어지고 카네이션의 냄새를 가지는 무색 액체이다.
- (4) **이소오이게놀(isoeugenol)** : 오이게놀로부터 합성으로 얻어지며 육두구(肉荳蔻 : nutmeg)유의 성분이다.
- (5) **피로카테콜모노에틸에테르**(구아에톨)[pyrocatechol monoethyl ether(guaethol)] : 스웨덴 송목유(swedish pine-wood oil)에 존재하고 방향성(芳香性)의 무색 결정체이다.

**(D) 과산화알코올(alcohol peroxide), 과산화에테르(ether peroxide),
과산화아세탈(acetal peroxide) · 과산화헤미아세탈(hemiacetal peroxide)과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

이것들은 ROOH, ROOR¹ 계열의 화합물로서, R과 R¹은 유기기(有機基 : organic radical)이다.

그 예로는 **과산화히드로에틸**과 **과산화디에틸**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s)**(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과산화시클로헥사논(1-히드로페록시시클로헥실-1-히드록시시클로헥실 페록사이드)(cyclohexanone peroxide(1-hydroperoxycyclohexyl-1-hydroxycyclohexyl peroxide))* 뿐만 아니라,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퍼옥시케탈(peroxyketal)을 포함한다][예: 1,1-디(터셔리-부틸페록시)시클로헥산]*을 분류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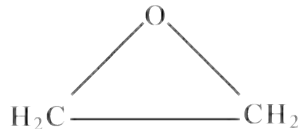
이 호에는 에테르(ether) · 에테르알코올(ether-alcohol) · 에테르페놀(ether-phenol) · 에테르알코올페놀(ether-alcohol-phenol) · 과산화알코올(alcohol peroxide) · 과산화에테르(ether peroxide)나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의 할로젠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와 복합유도체 [예: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 · 술폰할로젠화(sulphohalogenated)유도체 · 니트로할로젠화(nitrohalogenated)유도체와 니트로술폰할로젠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를 분류한다.

29.10 -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산화유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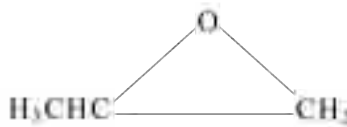
- 2910.1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 2910.2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 2910.3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 2910.40 - 디엘드린(ISO, INN)
- 2910.50 - 엔드린(ISO)
- 2910.90 - 기타

동일 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hydroxyl group)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diol) · 글리콜(glycol)]로부터 한 개의 물분자가 제거되면 안정된 내부 에테르(internal ethers)를 형성한다.

따라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로부터 물 1분자를 제거하면 **옥시란(oxirane)**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나 에폭시에탄(epoxyethane)]이 된다.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로부터 유도된 에폭시드(epoxide)[예: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의 한 개의 수소원자가 메틸기(methyl radical)로(-CH₃) 치환된 것]는 **메틸옥시란(methyloxirane)** [1,2-에폭시프로판(epoxypropane)이나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으로 알려져 있다.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의 한 개의 수소 원자가 페닐기(phenyl radical)(-C₆H₅)와 치환하여 유도된 에폭시드(epoxide)는 **산화스티렌(styrene oxide)**[**알파-베타-에폭시에틸벤젠(α-β-epoxyethylbenzene)**]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삼원고리의 에폭시드 고리를 가지는 화합물만을 분류한다. 예:

- (1)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oxirane**(ethylene oxide)]* : 실온(室溫)에서 무색 기체이며 섭씨 12도 이하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가스분해로 얻은 에틸렌(ethylene)을 촉매로 산화시켜 얻어지며 살충제와 살균제로서 ; 과일과 식품의 저장제로 널리 사용하고 유기 합성원료와 가스제와 계면활성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methyloxirane**(propylene oxide) : 에테르(ether)와 같은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서 질산셀룰로오스(cellulose nitrate) · 초산셀룰로오스(cellulose acetate) · 검(gum)과 수지의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하며 ; 또한 유기 합성원료(가스제와 계면활성제 등)로도 사용한다.

(3) **스티렌옥사이드(styrene oxide)**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에폭시알코올(epoxyalcohol) · 에폭시페놀(epoxyphenol)과 에폭시에테르(epoxyether)** : 이들은 각각에 에폭시기(epoxide grouping)가 결합된 알코올(alcohol) · 페놀(phenol) · 에테르(ether)를 함유한다.

(B) **에폭시드(epoxide)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와 이들의 복합유도체[예: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 · 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 · 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 · 니트로술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

이들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는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1-chloro-2,3-epoxypropane**(epichlorohydrin)]을 포함하며 이는 휘발성이 강한 불안정한 액체이다.

이 호에는 사원고리(four-membered ring)로 된 에폭시드(epoxide) 화합물은 **제외한다(제2932호)**.

**29.11 -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A) 아세탈(acetal)과 헤미아세탈(hemiacetal)*

아세탈(acetal)은 (보통 가설적으로) 알데히드(aldehyde)와 케톤(ketone)의 수화물의 디에테르(di-ether)로 본다.

헤미아세탈(hemiacetal)은 에테르(ether) 산소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탄소 원자에 수산기(hydroxyl group)가 붙어있는 모노에테르(mono-ether)이다.

“그 밖의 산소관능기를 갖는 아세탈(acetal)과 헤미아세탈(hemiacetal)”은 이 류의 앞 호에서 언급한 산소관능기(oxygen function)[예: 알코올관능기(alcohol function)]를 한 개 이상 갖는 아세탈과 헤미아세탈을 말한다.

- (1) **메틸알(methylal)**($\text{CH}_2(\text{OCH}_3)_2$)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수화물의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로서 에테르(ether)의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이며 ; 용제(溶劑 : solvent)·마취제·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디메틸아세탈(dimethylacetal)**($\text{CH}_3\text{CH}(\text{OCH}_3)_2$)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 수화물의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로서 마취제로 사용한다.
- (3) **디에틸아세탈(diethylacetal)**($\text{CH}_3\text{CH}(\text{OC}_2\text{H}_5)_2$) : 역시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 수화물로부터 얻어진다. 에테르(ether)와 같은 좋은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서 ; 용제(溶劑 : solvent)와 마취제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폴리비닐아세탈(polyvinyl acetal)은 제외한다(제3905호).

**(B) 아세탈(acetal)과 헤미아세탈(hemiacetal)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이들은 아세탈(acetal) 중의 한 개나 그 이상의 수소 원자가 할로겐[예: 클로랄알코올레이트(chloral alcoholate), 클로로프로필아세탈(chloropropyl acetal)]·술폰기(sulpho group)($-\text{SO}_3\text{H}$)·니트로기(nitro group)($-\text{NO}_2$)나 니트로소기(nitroso group)($-\text{NO}$)와 전부나 부분적으로 치환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또한 이들의 복합유도체도 분류한다[예: 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와 니트로술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제2912호 - 제2913호)

29.12 -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2912.12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2912.19 -- 기타

-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 -- 벤즈알데히드

2912.29 -- 기타

-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2912.41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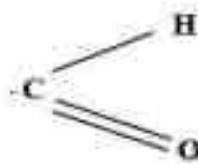
2912.42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2912.49 -- 기타

2912.5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2912.60 - 파라포름알데히드

이들은 제1차 알코올을 산화하여 형성되는 화합물로서 ; 특유한 기(group)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는 무색의 액체로서 ; 많은 방향족(芳香族)의 알데히드(aldehyde)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하여 산(acid)으로 전환한다.

그 밖의 “그 밖의 산소관능의 알데히드(aldehyde, with other oxygen function)”는 앞의 절 [알코올·페놀(phenol)·에테르(ether) 등의 관능기]에 열거된 산소관능기를 한 개나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알데히드(aldehyde)를 말한다.

(A) 알데히드(aldehyde)*

(I) 포화비환식알데히드(saturated acyclic aldehyde)

- (1) **메탄알**(포름알데히드)[**methanal**(formaldehyde)](HCHO) : 축매에 의한 메탄올의 산화에 의하여 얻어진다. 물에 잘 녹으며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무색의 가스로서 그 40% 수용액은 포르말린(formalin)이나 포르몰(formol)로 알려져 있으며 코를 찌르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이다. 이 용액은 안정제로서 메탄올(methanol)을 함유하고 있다.

메탄알(methanal)은 유기 합성[염료·폭약·의약품·합성유연제(synthetic tanning agents)·플라스틱 등]·방부제·탈취제와 환원제로 사용한다.
- (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ethanal**(acetaldehyde)](CH_3CHO) : 에탄올(ethanol)의 산화나 아세틸렌(acetylene)으로부터 얻어진다. 유동성·부식성이 있으며 과일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서 ; 가연성이고 휘발성이 높으며 ; 물·알코올과 에테르(ether)와 잘 혼합된다. 플라스틱·바니시(vernish)의 제조 원료와 방부제로서 의약용에 사용한다.
- (3) **부탄알**(부틸알데히드, 표준이성체)[**butanal**(butyraldehyde, normal isomer)]($\text{CH}_3\text{CH}_2\text{CH}_2\text{CHO}$) : 무색의 액체로서 물·알코올과 에테르(ether)와 혼합되며 플라스틱·향료의 제조와 고무가황 촉진제로 사용한다.
- (4) **헵탄알**(헵탈알데히드, 인난톨)[**heptanal**(heptaldehyde, oenanthal)]($\text{CH}_3(\text{CH}_2)_5\text{CHO}$) : 피마자유(castor oil)를 증류하여 얻어지며 ; 강한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이다.
- (5) **옥탄알**(카프릴알데히드)[**octanal**(caprylaldehyde)]($\text{C}_8\text{H}_{16}\text{O}$) ; 노난알(펠라르곤알데히드)[nonanal (pelargonaldehyde)]($\text{C}_9\text{H}_{18}\text{O}$) ; 데칸알(카프르알데히드)[decanal(capraldehyde)]($\text{C}_{10}\text{H}_{20}\text{O}$) ; 언데칸알(undecanal)($\text{C}_{11}\text{H}_{22}\text{O}$) ; 도데칸알(라우알데히드)[dodecanal(lauraldehyde)]($\text{C}_{12}\text{H}_{24}\text{O}$) 등. 이들은 향료 공업의 원료로 사용한다.

(II) 불포화비환식알데히드(unsaturated acyclic aldehyde)

- (1) **프로펜알**(아크릴알데히드·아크랄데히드·아크롤레인)[**propenal**(acrylaldehyde, acraldehyde, acrolein)]($\text{CH}_2=\text{CHCHO}$) : 지방물질을 태울 때 생성되며 ; 자극적이고 쓴 특유의 냄새를 지닌 액체로서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2-부텐알**(크로톤알데히드)[**2-butenal**(crotonaldehyde)]($\text{CH}_3\text{CH}=\text{CHCHO}$) : 가공하지 않은 알코올의 일차 증류물 중에 존재하며 ;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이다.
- (3) **시트랄(citral)** : 좋은 냄새를 지닌 액체로서 탄제린(tangerine)·시트론(citron)·레몬의 정유(essential oil)에 존재하며 ; 특히 레몬그라스유(lemon grass oil)에 존재한다.
- (4) **시트로넬알데히드(citronellaldehyde)** : 시트론유(citron oil)에 존재한다.

(III) 포화지환식(cyclanic)·불포화지환식(cyclenic)과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ic) 알데히드

- (1) **펠란드랄(phellandral)**이나 테트라히드로 큐민알데히드(tetrahydrocuminaldehyde) : 회향유(茴香油 : fennel oil)와 유칼립투스유(eucalyptus oil)에 존재한다.
- (2) **시클로시트랄 A(cyclocitral A)와 B** : 시트랄(citral)로부터 얻어진다.
- (3) **페릴알데히드(perillaldehyde)** : 페릴라 만키네시스(*Perilla mankinensis*)의 정유(essential oil)에 존재한다.
- (4) **사프란알(safranal)**

(IV) 방향족(芳香族) 알데히드(aromatic aldehyde)

- (1)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C_6H_5CHO)* : 쓴 아몬드 특유의 냄새를 지닌 굴절성이 높은 무색 액체로서 ; 유기 합성과 ; 의약품 등에 사용한다.
- (2) **신남알데히드(cinnamaldehyde)**($C_6H_5CH=CHCHO$) : 강한 계피 냄새를 가진 기름 같은 황색 액체로서 ; 향료에 사용한다.
- (3)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α -amylcinnamaldehyde)**
- (4) **3-파라-큐메닐-2-메틸프로피온알데히드(3-*p*-cumenyl-2-methylpropionaldehyde)**
- (5) **페닐아세트알데히드(phenylacetaldehyde)**($C_6H_5CH_2CHO$) : 히아신스(hyacinths) 냄새가 강한 액체로서 향료에 사용한다.

(B) 알데히드-알코올 · 알데히드-에테르(ether) · 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알데히드(aldehyde-alcohol, aldehyde-ether, aldehyde-phenol and aldehyde with other oxygen function)

알데히드알코올(aldehyde-alcohol)은 알데히드 관능기와 알코올 관능기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알데히드에테르(aldehyde-ether)는 역시 알데히드기(-CHO)를 함유하고 있는 에테르(ether)이다. 알데히드페놀(aldehyde-phenol)은 페놀수산기(C_6H_5OH)와 알데히드기(-CHO)를 동시에 함유하는 화합물이다.

알데히드알코올(aldehyde-alcohol) · 알데히드페놀(aldehyde-phenol) · 알데히드에테르(aldehyde-ether)의 가장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알돌(aldol)**($CH_3CH(OH)CH_2CHO$)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 알돌(aldol) 축합으로 얻어지는 ; 무색의 액체로서 그대로 두면 결정상의 덩어리로 중합한다[파랄돌(paraldol)]. 유기 합성 · 플라스틱의 제조와 부유선광용으로 사용한다.
- (2) **히드록시시트로넬알데히드(hydroxycitronellaldehyde)**($C_{10}H_{20}O_2$) : 대단히 강한 은방울꽃의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약간 시럽 상태의 액체로서 ; 향료의 고착제(fixative)로 사용한다.
- (3) **글리콜알데히드(glycollaldehyde)**($HOCH_2CHO$) : 무색의 결정체로 결정화한다.
- (4)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vanillin(4-hydroxy-3-methoxybenzaldehyde)]*** : 3,4-디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프로토키테큐알데히드)[3,4-dihydroxy-benzaldehyde(protocatechualdehyde)]의 메틸에테르(methyl ether)로서 ; 바닐라에 존재하고 광택이 있는 바늘 모양이나 결정성 백색 가루이다.
- (5)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ethylvanillin(3-ethoxy-4-hydroxybenzaldehyde)]** : 고운 백색 결정체
- (6) **살리실알데히드(오르토-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salicylaldehyde(*o*-hydroxybenzaldehyde)]**(HOC_6H_4CHO) : 쓴 아몬드의 특유의 냄새를 지는 무색의 기름 같은 액체로서 합성 향료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 (7) **3,4-디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프로토키테큐알데히드)((HO)₂ C_6H_3CHO)** : 광택 있는 무색의 결정체
- (8) **아니스알데히드(anisaldehyde)**($CH_3OC_6H_4CHO$)(파라-메톡시벤즈알데히드)(*p*-methoxybenzaldehyde). 무색의 액체로서 아니스의 열매(aniseed)와 회향유(茴香油 : fennel oil)에서 발견된다. “호돈정유(hawthorn essence)(aubepine : 산사나무)”라는 이름으로 향료에 사용한다.

(C) 알데히드(aldehyde)의 환식중합체

- (1) **트리옥산**(트리옥시메틸렌)[**trioxan**(trioxymethylene)]*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고체중합물로서 ; 물·알코올이나 에테르(ether)에 녹는 백색 결정체이다.
- (2) **파라알데히드(paraldehyde)** : 에탄알(ethanal)의 중합체로서 ; 에테르(ether)와 같은 냄새를 가지는 무색 액체로서 인화성이 강하며, 유기 합성용과 의약품(최면제·살균제) 등으로 사용한다.
- (3) **메타알데히드(metaldehyde)** : 에탄알(ethanal)의 중합체로서 ; 결정성의 백색 가루 상태로 물에 녹지 않는다. 이 호에 분류하는 메타알데히드(metaldehyde)는 결정이나 가루 상태인 것에만 한정한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모양[예: 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메타알데히드(metaldehyde)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606호)**[제36류의 주 제2호가목 참조].

(D)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수용액을 증발시켜 얻어지는 중합체($\text{HO}(\text{CH}_2\text{O})_n\text{H}$)이다. 이것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냄새가 강한 백색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가루 상태의 고체 물질이다. 이것은 플라스틱·방수 교착제와 의료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외에 살균제와 보존제로서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알코올의 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로 분류하는 중아황산알데히드(aldehyde-bisulphite)의 화합물은 **제외한다(제2905호부터 제2911호까지)**.

29.13 -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이들은 알데히드(aldehyde)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알데히드기(aldehyde group)(-CHO)의 수소는 제외한다]가 하나나 그 이상의 할로겐기(halogen group) · 술폰기(sulpho group)(-SO₃H) · 니트로기(nitro group)(-NO₂)나 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와 이들의 복합기에 의하여 치환하여 유도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클로랄**(트리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chloral**(trichloroacetaldehyde)](C₁₃CCHO)로서 ;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무수 · 유동성의 무색 액체이며 일종의 최면제이다.

제2905호에 해당되는 함수클로랄(chloral hydrate)(C₁₃CCH(OH)₂)(2,2,2-트리클로로에탄-1,1-디올)(2,2,2-trichloroethane-1,1-diol)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알코올의 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로 분류하는 중아황산알데히드(aldehyde-bisulphite) 화합물은 **제외한다(제2905호부터 제2911호까지)**.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제2914호)

**29.14 -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 -- 아세톤

2914.12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2914.13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2914.19 -- 기타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2914.23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2914.29 -- 기타

-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2914.39 -- 기타

2914.4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2914.5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 퀴논

2914.61 -- 안트라퀴논

2914.62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2914.69 -- 기타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71 -- 클로르데콘(ISO)

2914.79 -- 기타

“그 밖의 산소 관능의 케톤과 퀴논(ketone and quinon with other oxygen function)”은 앞의 절에 열거된 하나나 그 이상의 산소관능기[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알데히드(aldehyde) 등의 관능기]를 함유하는 케톤과 퀴논을 말한다.

(A) 케톤(ketone)*

이들은 “카보닐(carbonyl)”기로 불려지는 ($>C=O$) 기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알킬기(alkyl radical)나 아릴기(aryl radical)(메틸·에틸·프로필·페닐 등)는 R와 R¹로 표현되며 일반식은 R-CO-R¹로 표현한다.

케톤(ketone)에는 진정한 케톤형(true ketonic form)(-CO-)과 에놀형(enolic form)(=C(OH)-)의 두 가지의 호변이성형(tautomeric form)이 있으며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

(I) 비환식 케톤(acyclic ketone)

- (1) **아세톤**(프로판온)[**acetone**(propanone)] (CH_3COCH_3) : 목재의 건류 생산품[메틸알코올(methyl alcohol)과 가공하지 않은(crude) 피로리그너스산(pyroligneous acid)] 중에 존재하며 주로 합성에 의하여 얻어진다. 에테르(ether)와 같은 좋은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서 여러 가지의 유기 합성원료·플라스틱의 제조·아세틸렌(acetylene)·아세틸셀룰로오스(acetylcellulose)와 수지 등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사용한다.
- (2) **부탄논**(메틸에틸케톤)[**butanone**(methyl ethyl ketone)]($CH_3COC_2H_5$) : 무색 액체로서 사탕무 당밀로부터 얻어지는 알코올 증류의 부산물 중에 존재하며 또한 제2차 부틸 알코올(butyl alcohol)을 산화하여 얻는다.
- (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pentan-2-one**(methyl isobutyl ketone)] ($(CH_3)_2CHCH_2COCH_3$) : 상쾌한 냄새를 지닌 액체로서 질산셀룰로오스(cellulose nitrate)·검(gum)과 수지의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 (4) **산화메시틸(mesityl oxide)** : 두 개의 아세톤 분자를 축합하여 얻어지는 무색의 액체이다.
- (5) **포론(phorone)** : 세 개의 아세톤 분자를 축합하여 얻어지는 화합물
- (6) **슈도이오논(pseudoionone)** : 복합 케톤(complex ketone)으로서 오랑캐 꽃의 냄새를 지닌 황색의 액체이며 ; 이오논(ionone)(인조 오랑캐꽃의 기름)의 조제에 사용한다.
- (7) **슈도메틸이오논(pseudomethylionone)** : 오랑캐꽃과 같은 냄새를 가지며 슈도이오논(pseudoionone)과 같은 성질을 지닌 액체로서 향료로 사용한다.
- (8) **디아세틸(diacetyl)**($CH_3COCOCH_3$)* : 퀴논(quinone)과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녹황색의 액체로서 버터와 마가린의 향미용으로 사용한다.
- (9) **아세틸아세톤(acetylacetone)**($CH_3COCH_2COCH_3$)* : 좋은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서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10) **아세토닐아세톤(acetonylacetone)**($CH_3COCH_2CH_2COCH_3$)* : 좋은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서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II) 포화지환식(cyclanic)·불포화지환식(cyclenic)이나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ic) 케톤

- (1) **장뇌(camphor)**($C_{10}H_{16}O$)* : 이 호에는 천연과 합성의 장뇌(camphor)를 모두 분류한다. 천연의 것은 중국과 일본에서 나는 라우러스 캄포라나무(*Laurus camphora* tree)로부터 얻어지며 합성 장뇌는 피넨(pinene)[터펜틴유(spirits of turpentine)로부터 얻어진다]로부터 유도되는 것으로서 두 가지 모두 촉감이 부드럽고 투명하며 독특한 냄새를 가진 무색 결정의 덩어리이다. 이들은 방부제로서 의약품·셀룰로이드(celluloid)제조와 증약[나프탈렌(naphthalene)]에 사용한다.

소위 “용뇌(Borneo camphor)”나 “보르네올(borneol)”로 불리는 것은 케톤(ketone)이 아니고 알코올로서 장뇌(camphor)의 환원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서 ;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906호)**.

- (2)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C_6H_{10}O$) : 합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 아세톤과 같은 냄새를 지닌 액체로서 아세틸셀룰로오스(acetylcellulose)와 천연이나 인조 수지의 강력한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 (3) **메틸시클로헥사논(methylcyclohexanone)** : 액체로서 물에 녹지 않는다.
- (4) **이오논(ionone)**($C_{13}H_{20}O$) : 아세톤과 시트랄(citral)의 축합작용으로 생성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알파이오논(α -ionone)** : 강한 오랑캐꽃과 같은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이다.
 - (b) **베타이오논(β -ionone)** : 알파이오논(α -ionone)보다는 오랑캐꽃과 같은 냄새를 약간 지닌 무색의 액체이다.
 모두 향료에 사용한다.
- (5) **메틸이오논(methylionone)** : 무색부터 호박색까지의 액체
- (6) **펜촌(fenchone)**($C_{10}H_{16}O$) : 회향유(茴香油 : fennel oil)와 튜자유(thuja oil)에서 얻어지며 장뇌(camphor)와 같은 냄새를 지닌 맑은 무색의 액체로서 ; 장뇌(Camphor) 대용으로 사용한다.
- (7) **아이론(irone)** : 아이리스(iris)중의 식물 뿌리로부터 얻어진 정유(essential oil)에서 생성되며 아이리스식물과 같은 냄새를 지닌 무색 유상의 액체로서 ; 강하게 희석된 것은 오랑캐꽃에 가까운 냄새를 지니고 있다. 향료에 사용한다.
- (8) **자스몬(jasmone)**($C_{11}H_{16}O$) : 자스민 꽃으로부터 유도되며 강한 자스민의 냄새를 지닌 엷은 황색의 기름으로서 향료용으로 사용한다.
- (9) **카르본(carvone)**($C_{10}H_{14}O$) : 카라웨이유(caraway oil) · 아니스유(aniseed oil)와 박하유(薄荷油 : mint oil)에서 얻어지며 강한 방향성(芳香性)의 무색 액체이다.
- (10) **시클로펜타논(아디포케톤)[cyclopentanone(adipoketone)]**(C_4H_8CO) : 목재의 증류에서 얻어지며 박하와 같은 냄새를 지닌 액체이다.
- (11) **멘톤(menthone)**($C_{10}H_{18}O$) : 페퍼민트유와 그 밖의 정유(essential oil)속에 존재하며 멘톨(menthol)을 산화시켜 합성으로 얻는다. 박하의 냄새를 지닌 불안정한 굴절성의 무색액체이다.

(Ⅲ) 방향족(芳香族 : aromatic) 케톤(ketone)

- (1) **메틸나프틸케톤(methyl naphthyl ketone)**
- (2) **벤질리덴아세톤(benzylideneacetone)**($C_6H_5CH=CHCOCH_3$) : 무색의 결정체로서 스위트피(sweet pea)의 향기가 난다.
- (3) **아세토펜(acetophenone)**($CH_3COC_6H_5$) : 좋은 방향성(芳香性)의 냄새를 지닌 유상(oily)의 무색이나 황색의 액체로서 ; 향료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4) **프로피오펜(propiofenone)**
- (5) **메틸아세토펜(methylacetophenone)**($CH_3C_6H_4COCH_3$) : 좋은 냄새를 지닌 무색이나 황색의 액체

- (6) **부틸디메틸아세토펜논(butyldimethylacetophenone)**
- (7) **벤조페논(benzophenone)**($C_6H_5COC_6H_5$) : 에테르(ether)와 같은 좋은 냄새를 가진 무색이나 담황색의 결정체로서 유기 합성·합성향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 (8) **벤즈안트론(benzanthrone)** : 황색 바늘 모양
- (9)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phenylacetone**(phenylpropan-2-one)]. 무색에서 밝은 황색 액체이며, 주로 유기 합성과 암페타민(amphetamine) 합성에서 선구물질(presursor)로 사용한다(제29류 끝에 선구물질의 목록 참조).

(B) 케톤알코올(ketone-alcohol)

분자 내에 알코올과 케톤 관능기를 동시에 함유하는 화합물

- (1) **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알코올)[**4-hydroxy-4-methylpentan-2-one**(diacetone alcohol) : 무색 액체
- (2) **아세톨**(아세틸카르비놀)[**acetol**(acetylcarbinol)](CH_3COCH_2OH) :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서 ; 셀룰로오스 바니시(cellulose varnishe)와 수지의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C) 케톤알데히드(ketone-aldehyde)

분자 내에 케톤과 알데히드 관능기를 동시에 갖는 화합물

(D) 케톤페놀(ketone-phenol)

분자 내에 케톤과 페놀 관능기를 동시에 갖는 화합물

(E) 퀴논(quinone)*

방향족(芳香族)화합물로부터 유도된 디케톤(diketone)으로서 2중 결합의 재정렬에 따라 두 개의 $\geq CH$ 기가 $>C=O$ 기로 변환함으로써 얻어진다.

- (1) **안트라퀴논(anthraquinone)**($C_6H_4(CO)_2C_6H_4$)* : 황색의 바늘 모양으로서 분쇄하면 백색 가루로 되고 염료 제조에 사용한다.
- (2) **파라-벤조퀴논**(퀴논)[**p-benzoquinone**(quinone)]($C_6H_4O_2$) : 황색 결정체로서 자극적인 냄새를 갖는다.
- (3) **1,4-나프토퀴논(1,4-naphthoquinone)**($C_{10}H_6O_2$) : 황색의 바늘 모양
- (4) **2-메틸안트라퀴논(2-methylanthraquinone)** : 백색의 바늘 모양
- (5) **아세나프텐퀴논(acenaphthenequinone)** : 황색의 바늘 모양
- (6) **펜안트라퀴논(phenanthraquinone)** : 황색의 바늘 모양

(F) 퀴논알코올(quinone-alcohol) · 퀴논페놀(quinone-phenol) · 퀴논알데히드(quinone-aldehyde)와 그 밖의 산소관능의 퀴논(oxygen function quinone)

퀴논알코올(quinone-alcohol) · 퀴논페놀(quinone-phenol)과 퀴논알데히드(quinone-aldehyde)는 분자 내에 알코올 · 페놀(phenol)과 알데히드관능기(aldehyde function)가 퀴논기(quinone function)와 동시에 결합한 화합물이다.

- (1) **알파-히드록시안트라퀴논(α -hydroxyanthraquinone)**
- (2) **퀴니자린(quinizarin)**
- (3) **크리사진(chrysazin)**
- (4)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G) 케톤(ketone) · 퀴논(quinone) · 케톤알코올(ketone-alcohol) · 퀴논알코올(quinone-alcohol) 등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 (1) **브롬장뇌(bromocamphor)**($C_{10}H_{15}OBr$) : 장뇌(camphor)와 같은 강한 냄새를 지닌 바늘 모양로서 진정제로 사용한다.
- (2) **4'-터셔리-부틸-2',6'-디메틸-3',5'-디니트로아세트페논(케톤 머스크)**[4'-tert-butyl-2',6'-dimethyl-3',5'-dinitroacetophenone(ketone musk)]
- (3) **장뇌술폰산(camphorsulphonic acid)**
- (4) **클로르데콘(ISO)**

*
* *

이 호에는 또한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의 복합화합물을 분류한다[예: 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 · 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 ·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와 니트로술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

유기색소(organic colouring matter)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32류)**, 또한 알코올의 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로 분류하는 케톤 중아황산(ketone-bisulphite) 화합물도 **제외한다(제2905호부터 제2911호까지)**.

제7절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15호 - 제2918호)

총설

이 절에는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라고 불리어지는 특유한 관능기(-COOH)를 함유하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을 분류한다. 또한 이론적인 면에서는 **오르토산(ortho-acid)**(RC(OH)₃)들도 수화카르복시산(hydrated carboxylic acid)(RCOOH+H₂O=RC(OH)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유리상태(遊離狀態: free state)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안정한 에스테르(ester)[오르토-에스테르(ortho-ester), 즉, 수화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esters of hydrated carboxylic acid)로 간주하는 것]를 발생시킨다.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은 한 개 이상의 카르복실기(carboxyl group)(-COOH)(일염기산이나 다염기산)를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수산기(-OH)가 제거되면 남는 것은 아실(RCO-)기이며 이때 R은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 [메틸(methyl) · 에틸(ethyl) · 페닐(phenyl) 등]를 말한다. 아실기(acyl radical)는 **무수물(無水物: anhydride) · 할로겐화물(halide) · 과산화물(peroxide) · 과산화산(peroxyacid), 에스테르(ester)와 그 염**의 구조식이 들어 있다.

(-SO₃H)기를 함유하는 술폰산(sulphonic acid)은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들은 각질의 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로 분류하고, 이 절에는 단지 이 절의 화학품의 술폰화 유도체만 분류한다.

(A) 산무수물(酸無水物: acid anhydride)

산무수물(酸無水物)은 일염기산의 두 개의 분자나 이염기산의 한 개의 분자로부터 물 1분자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들은 특유의 (-C(O)OC(O)-)기를 가지고 있다.

(B) 산할로겐화물(acid halide)

산의 할로겐화물(halide)[예: 염화물(chloride)과 브롬화물(bromide)]은 일반식[RCOX(X는 할로겐 원소)]을 갖는 것으로서 염소 · 브롬과 그 밖의 할로겐 원소와 결합한 아실기(acyl radical)로 표현한다.

(C) 산과산화물(acid peroxide)

산 과산화물(또한 디아실 과산화물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두 개의 아실기가 두 개의 산소원자와 결합한 화합물로서, 일반식은 (RC(O)OOC(O)R)^{*}이며, 여기에서 R과 R'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D) 과산화산(peroxyacid)

일반식은 (RC(O)OOH)이다.

(E) 산의 에스테르(ester of acid)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 에스테르(ester)는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 수소 원자가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와 치환하여 얻어진다. 이들은 R과 R¹이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메틸·에틸·페닐 등]로서 그 일반식은 (RC(O)OR¹)으로 표현한다.

(F) 과산화에스테르(peroxyester)

과산화에스테르의 일반식은 RC(O)OOR¹이며, 여기에서 R과 R¹은 유기기(有機基 : organic radical)로서 R과 R¹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G) 산의 염(salt of acid)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 염은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 수소 원자가 무기양이온(예: 나트륨·칼륨·암모늄)과 치환하여 얻어진다. 이들의 일반식은 (RC(O)OM)으로 표현하고, 이때 R은 알킬·아릴이나 알카릴(alkaryl)기이며 M은 금속이나 그 밖의 무기 양이온이다.

(H) 산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앞의 (A)부터 (F)까지에 설명된 화합물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들의 산소를 함유하는 관능기는 그대로 있으나 R이나 R¹기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 원소는 각각 할로젠기(halogens group)·술폰기(sulpho group)(-SO₃H)·니트로기(nitro group)(-NO₂)·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나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치환한다.

29.15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 -- 포름산

2915.12 -- 포름산의 염

2915.13 -- 포름산의 에스테르

-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 -- 초산

2915.24 -- 무수(無水)초산

2915.29 -- 기타

- 초산 에스테르

2915.31 -- 초산에틸

2915.32 -- 초산비닐

2915.33 -- 초산노르말부틸

2915.36 -- 초산디노셉(ISO)

2915.39 -- 기타

- 2915.4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2915.5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 2915.60 - 부탄산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2915.70 -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2915.90 - 기타

이 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과 그 무수물(無水物 : anhydride) · 할로겐화물(halide) · 과산화물(Peroxide) · 과산화산(peroxyacid) · 에스테르(esters)와 염을 분류하며,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도 분류한다.

(I) 포름산(formic acid)(HCOOH)과 그 염(salt)과 에스테르(ester)

(a) **포름산**은 천연에서도 존재하고 합성으로도 얻어지는 유동성의 무색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약간 증기를 발생(發煙 : fume)하며 자극적인 냄새와 부식성이 있다. 염색 · 유연(tanning) · 라텍스의 응고 · 방부제로서 의약용이나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b) **포름산의 주요 염은 다음과 같다.**

- (1) **포름산나트륨(sodium formate)(HCOONa)** : 조해성(潮解性)의 결정성 백색 가루로서 ; 의약 · 유연(tanning)과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2) **포름산칼슘(calcium formate)((HCOO)₂Ca)** : 결정체
- (3) **포름산알루미늄(aluminium formate)((HCOO)₃Al)** : 백색의 가루로서 매염제(媒染劑 : mordant)와 방수용으로 방직 공업에 사용한다. 또한 염기성 포름산염은 일반적으로 수용액으로 포장되어 있다.
- (4) **포름산니켈(nickel formate)((HCOO)₂Ni)** : 오일의 수소화반응 촉매제로 사용한다.

(c) **포름산의 주요 에스테르(ester)는 다음과 같다.**

- (1) **포름산메틸(methyl formate)(HCOOCH₃)** : 좋은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
- (2) **포름산에틸(ethyl formate)(HCOOC₂H₅)** : 무색이며 유동성, 휘발성, 가연성이 있는 액체로서 럼(rum)의 냄새가 난다.
- (3) **포름산벤질(benzyl formate) · 포름산보르닐(bornyl formate) · 포름산시트로넬릴(citronellyl formate) · 포름산제라닐(geranyl formate) · 포름산이소보르닐(isobornyl formate) · 포름산리날릴(linalyl formate) · 포름산멘틸(menthyl formate) · 포름산페닐에틸(phenylethyl formate) · 포름산로디닐(rhodinylyl formate)과 포름산테르페닐(terpenyl formate)** : 모두 향료에 사용한다.

(II) 초산(acetic acid)(CH₃COOH)과 그 염(salt)과 에스테르(ester)

(a) **초산(acetic acid)**은 목재의 건류나 합성에 의하여 얻어지며 식초의 자극적인 냄새와 같은 특유한 냄새를 지닌 강한 산성의 액체로서 냉각하면 무색의 결정체(빙초산)로 고체화된다. 인(phosphorus) · 황과 많은 유기 물질의 용매로 사용한다.

상거래 관습상의 초산(acetic acid)은 엷은 황색이며 가벼운 연소성 냄새를 풍기는 것이 많다. 방직공업·유연(tanning)·라텍스의 응고제·초산염의 제조·합성가소제·의료용에 사용한다.

(b) **초산(acetic acid)의 주요 염(salt)은 다음과 같다.**

- (1) **초산나트륨(sodium acetate)**(CH_3COONa) : 무색·무취의 결정체나 백색이나 엷은 황색의 무취 가루로서 매염제(媒染劑 : mordant)와 여러 화학 조제품에 사용한다.
- (2) **초산코발트(cobalt acetate)**($(\text{CH}_3\text{COO})_2\text{Co}$) : 초산의 냄새를 지닌 조해성(潮解性 : deliquescent)의 적자색의 결정체이다.
- (3) **초산칼슘(calcium acetate)**($(\text{CH}_3\text{COO})_2\text{Ca}$) : 순수한 것은 무색의 결정체이다.
- (4) **염기성 초산동**($\text{CH}_3\text{COOCuOH}$) : 바늘 모양이나 작은 결정 플레이크(flake) 모양의 청색이며 ; 공기와 접촉하면 분해되고 녹색으로 변한다.
- (5) **중성 초산동**($(\text{CH}_3\text{COO})_2\text{Cu}$) : 녹색의 가루이나 작은 결정체로서 ; 공기와 접촉하면 분해되고 백색의 가루로 변한다.
- (6) **초산납** : 중성($(\text{CH}_3\text{COO})_2\text{Pb}$)이나 염기성(예: $\text{Pb}(\text{CH}_3\text{COO})_2 \cdot 3\text{PbOH}_2\text{O}$). 중성의 초산납은 무색이나 약간의 황색과 청색의 독성있는 결정체이며 염기성 초산염은 진한 농도의 백색 가루로서 의약품과 화학분석 시약으로 사용한다.
- (7) **초산리튬(lithium acetate)과 초산칼륨(potassium acetate)**은 의약품으로 사용하며 ; **초산크롬(chromium acetate)·초산알루미늄(aluminium acetate)과 초산철**은 매염제(媒染劑 : mordant)로 사용한다.

(c) **초산(acetic acid)의 주요 에스테르(esters)는 다음과 같다.**

- (1) **초산메틸(methyl acetate)**($\text{CH}_3\text{COOCH}_3$) : 목재의 건류 물품 중에 존재하며 과일과 같은 냄새를 지닌 액체로서 ; 인조 과일 에센스의 조제와 지방·수지와 질산셀룰로오스 등의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 (2) **초산에틸(ethyl acetate)**($\text{CH}_3\text{COOC}_2\text{H}_5$) : 과일의 냄새를 지닌 무색 유동성질의 가연성이 높은 액체이고 ; 불순물로서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다. 질산셀룰로오스(cellulose nitrate)·바니시(vernish) 등의 용제(溶劑 : solvent) ; 의약품으로는 진경제(antispasmodic)와 진통제(analgesic)로도 사용한다.
- (3) **초산비닐(vinyl acetate)**($\text{CH}_3\text{COOCH}=\text{CH}_2$) : 독특한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서 폴리(비닐아세테이트)[제3905호의 중합체(polymer)] 제조용의 단량체(單量體 : monomer)이다.
- (4) **초산노르말프로필(*n*-propyl acetate)과 초산이소프로필(isopropyl acetate)** : 인조 과일 에센스의 제조에 사용한다.
- (5) **초산노르말부틸(*n*-butyl acetate)** : 무색 액체로서 ; 인조 과일 에센스제조와 용제(溶劑 : solvent)로서 사용한다.
- (6) **초산이소부틸(isobutyl acetate)** : 무색 액체로서 ; 인조 과일 에센스와 용제(溶劑 : solvent)로서 사용한다.

(7) **초산노르말펜틸**(초산노르말아밀)[*n*-pentyl acetate(*n*-amyl acetate)]과 초산3메틸부틸(초산이소아밀)[3-methylbutyl acetate(iso-amyl acetate)] : 인조 과일 에센스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8) **초산2에톡시에틸**(2-ethoxyethyl acetate)

(9) **초산벤질**(benzyl acetate) · **초산테르페닐**(terpenyl acetate) · **초산리날릴**(linalyl acetate) · **초산제라닐**(geranyl acetate) · **초산시트로넬릴**(citronellyl acetate) · **초산아니실**(anisyl acetate) · **초산파라톨릴**(paratolyl acetate) · **초산신나밀**(cinnamyl acetate) · **초산페닐에틸**(phenylethyl acetate) · **초산보르닐**(bornyl acetate)과 **초산이소보르닐**(isobornyl acetate)은 모두 향료에 사용한다.

(10) **초산글리세린**(모노-, 디-, 트리아세틴)[glycerol acetate(mono-, di-, triacetin)]

이 호에는 **무수초산**((CH₃CO)₂O)을 포함한다. 강한 자극성 냄새가 있으며 ; 부식성을 가지는 ; 무색 액체로서 ; 화약품 합성에 사용된다.

(Ⅲ) 모노-, 디-, 트리클로로아세트산(mono-, di-, trichloroacetic acid)과 이들의 염(salt)과 에스테르(ester)

(a) **모노클로로아세트산(monochloroacetic acid)**(ClCH₂COOH) : 무색 결정체

(b) **디클로로아세트산(dichloroacetic acid)**(Cl₂CHCOOH) : 무색의 액체

(c)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Cl₃CCOOH) : 찌르는 듯한 냄새를 지닌 무색의 결정체로서 ; 유기 합성과 의약에 사용한다.

(Ⅳ) 프로피온산(CH₃CH₂COOH)과 그 염과 에스테르 :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은 초산(acetic acid)과 유사한 냄새를 지닌 액체이다.

(Ⅴ) 부탄산(butanoic acid)과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a) **부티르산(부탄산)[butyric acids(butanoic acid)]***은 불쾌한 악취를 지닌 밀도가 큰 기름 모양의 무색 액체로서 가죽탈회용으로 사용한다.

(b) **이소부틸산(2-메틸프로판산)[isobutyric acid(2-methylpropanoic acid)]**

(Ⅵ) 펜탄산(pentanoic acid)과 이들의 염(salt)과 에스테르(ester)

(a) **발레르산(펜탄산)[valeric acid(pentanoic acid)]** : 불쾌한 악취를 지닌 무색투명한 기름같은 액체이다.

(b) **이소발레르산(3-메틸부탄산)[isovaleric acid(3-methylbutanoic acid)]**

(c) **피발릭산(2,2-디메틸프로판산)[pivalic acid(2,2-dimethylpropanoic acid)]**

(d) **2-메틸부탄산(2-methylbutanoic acid)**

(Ⅶ) 팔미트산(CH₃(CH₂)₁₄COOH)과 그 염(salt)과 에스테르(ester)

(a) **팔미트산(palmitic acid)** : 글리세라이드(glyceride) 상태로 지방에 존재하며 ; 백색의 가루 상태, 광택 있는 결정체나 무색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다.

(b) **이들의 주요 염은 다음과 같다.**

(1) **팔미트산칼슘(calcium palmitate)** : 향료에 사용한다.

(2) **팔미트산알루미늄(aluminium palmitate)** : 식물 방수용과 윤활유 증점제로 사용한다.

수용성 팔미트산염(water-soluble palmitic salt)[예: 팔미트산나트륨(sodium palmitate) · 팔미트산칼륨(potassium palmitate)과 팔미트산암모늄(ammonium palmitate)]은 비누류(soaps)이나 이 호에 분류한다.

(VIII) 스테아르산(stearic acid)(CH₃(CH₂)₁₆COOH)과 그 염(salts)과 에스테르(esters)

(a) **스테아르산(stearic acid)** : 글리세라이드(glyceride) 상태로 지방에 존재하며 ; 백색 무정형으로서, 왁스(wax)와 비슷하다.

(b) **이들의 주요 염은 다음과 같다.**

- (1) **스테아르산칼슘(calcium stearate)** : 식물의 방수용으로 사용한다.
- (2) **스테아르산마그네슘(magnesium stearate)** : 바니시(vernish)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 (3) **스테아르산아연(zinc stearate)** : 의약 · 고무와 플라스틱공업에 사용하는 외에도 기름천(oil-cloth)의 제조에 사용한다.
- (4) **스테아르산알루미늄(aluminium stearate)** : 팔미트산알루미늄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 (5) **스테아르산구리(copper stearate)** : 플라스터(plaster)의 청동색용과 오염방지제로 사용한다.
- (6) **스테아르산납(lead stearate)** : 건조제로 사용한다.

수용성 스테아르산염[예: 스테아르산나트륨(sodium stearate) · 스테아르산칼륨(potassium stearate)과 스테아르산암모늄(ammonium stearate)]은 비누류(soap)이나 이 호에 분류한다.

(c) 이들의 **에스테르(ester)**에는 스테아르산에틸(ethyl stearates) · 스테아르산부틸(buhtyl stearate)[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로 사용한다]과 스테아르산글리콜(glycol stearate)(천연왁스의 대용품으로 사용한다)을 포함한다.

(IX) 이 호에 포함되는 그 밖의 물품

- (a) **클로로포름산에틸(ethyl chloroformate)** : 때때로 클로로탄산에틸(ehtyl chlororocarbonate)이라 칭하고 질식성의 냄새를 지닌 최루성의 무색 액체이며 가연성이다.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b) **염화아세틸(acetyl chloride)(CH₃COCl)** : 무색 액체로서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눈을 자극하는 증기를 발생하고 ; 강한 냄새를 갖는다.
- (c) **브롬화아세틸(acetyl bromide)(CH₃COBr)** : 염화물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d) **모노-, 디-, 트리브로모아세트산(mono-, di-, tribromoacetic acid)과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e) **노르말헥소산(카프로익)[n-hexoic(caproic)]과 2에틸부틸산[2-ethylbutyric acid]과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f) **노르말옥토산(카프릴릭)[n-octoic(caprylic)]과 2에틸헥소산[2-ethylhexoic acid]과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초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이하 함유된 식용 초산수용액(potable solution of acetic acid in water) (**제2209호**)
- (b) 가공하지 않은 스테아르산(crude stearic acid)의 염과 에스테르(보통 **제3401호 · 제3404호 · 제3824호**)
-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 혼합물의 지방 유화제(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
- (d) 순도(純度 : purity) 90% 미만(건조한 물품으로 계산한 것)의 지방산(**제3823호**)

29.16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11 -- 아크릴산과 그 염

2916.12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916.13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2916.14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916.15 -- 올레산 · 리놀레산 ·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2916.16 -- 비나파크릴(ISO)

2916.19 -- 기타

2916.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31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6.32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2916.34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2916.39 -- 기타

이 호에는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monocarboxylic acids)과 환식 모노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無水物 : anhydrides)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 에스테르(esters) ·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 유도체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A)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un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과 그 염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 (1) **아크릴산(acrylic acid)**($\text{CH}_2=\text{CHCOOH}$)* : 매운 냄새를 갖는 무색 액체이다. 쉽게 중합되며 ; 폴리아크릴산과 그 밖의 아크릴중합체의 단량체(單量體 : monomer)로 사용한다.
- (2) **메타아크릴산(methacrylic acid)** : 이 산의 에스테르(ester) 중합체는 플라스틱의 구성요소가 된다(제39류).
- (3) **올레산(oleic acid)**($\text{C}_{18}\text{H}_{34}\text{O}_2$) : 글리세라이드(glyceride)로서 지방과 기름에 존재한다. 무색 무취의 액체로서 섭씨 약 4°C의 온도에서는 바늘 모양으로 결정화된다.

물에 녹는 올레산염(oleic salt)[예: 나트륨·칼륨과 암모늄의 올레산염(oleate)]은 비누(soaps)이지만 이 호에 분류한다.

- (4) **리놀레산(linoleic acid)**($C_{18}H_{32}O_2$) : 글리세라이드(glyceride)로서 아마인유(linseed oil)에 존재하는 ; 건성의 산이다.
- (5) **리놀렌산(linolenic acid)**($C_{18}H_{30}O_2$)
- (6) **헵티노산(heptynoic acid)과 옥티노산(octynoic acid)**

(B) 포화지방산 · 불포화지방산이나 시클로헥스펜모노 카르복시산과 그 염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 (1) **시클로헥산카르복시산(cyclohexanecarboxylic acid)**
- (2) **시클로펜텐아세트산(cyclopentenylacetic acid)**

(C) 방향족 포화 모노카르복시산과 그 염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 (1) **벤조산(benzoic acid)**(C_6H_5COOH)* : 몇몇의 수지와 발삼(balsam)에 존재하며 합성에 의해서도 조성된다. 순수한 산(acid)인 경우에는 백색 바늘 모양의 결정체이거나 광택 있는 백색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무취이다. 방부제로 사용한다.

이들의 주요 염은 벤조산암모늄 · 벤조산나트륨 · 벤조산칼륨과 벤조산칼슘이다.

이들의 주요 에스테르(ester)는 벤조산벤질 · 벤조산나프틸 · 벤조산메틸 · 벤조산에틸 · 벤조산제라닐 · 벤조산시트로넬릴 · 벤조산리날릴과 벤조산로디닐이다.

이 호에는 또한 특히 다음의 벤조산 유도체를 포함한다.

- (a)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 백색 알갱이 모양 결정성 고체로서 의약품 · 고무와 플라스틱 공업용과 지방 · 기름 · 제분 등의 표백제로 사용한다.
- (b) **염화벤조일(benzoyl chloride)**(C_6H_5COCl)* : 백색 결정체. 독특한 냄새를 지닌 최루성의 무색 액체로서 ; 공기에 노출되면 발연한다.
- (c) **니트로벤조산(nitrobenzoic acid)**(오르토 · 메타와 파라)($O_2NC_6H_4COOH$)
- (d) **염화니트로벤조일(nitrobenzoyl chloride)**(오르토 · 메타와 파라)($O_2NC_6H_4COCl$)
- (e) **클로로벤조산(chlorobenzoic acid)**(ClC_6H_4COOH)
- (f) **디클로로벤조산(dichlorobenzoic acid)**($Cl_2C_6H_3COOH$)
- (2) **페닐아세트산(phenylacetic acid)**($C_6H_5CH_2COOH$) : 꽃냄새가 나는 백색 판 모양의 결정이다. 향료와 향미료 · 페니실린 G(Penicillin G)와 살진균제의 제조 · 유기 합성과 암페타민 합성에서 선구물질(precursor)로 사용한다(제29류 끝에 선구물질과 필수 화학물질의 목록 참조).

이들의 주 에스테르(main ester)는 에틸페닐아세테이트 · 메틸페닐아세테이트와 오르토-메톡시페닐 페닐아세테이트(구아이야콜페닐아세테이트)들이다.

- (3) **페닐프로피온산 · 나프토산(phenylpropionic, naphthoic acid)**

(D) 방향족 불포화 모노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그 염·에스테르(ester)와 그 밖의 유도체

계피산(cinnamic acid)($C_6H_5CH=CHCOOH$) : 계피유(cinnamon oil)와 톨루(Tolu) 발삼과 페루(Peru) 발삼 내에 존재하며 무색의 결정체이다.

이들의 주요염은 계피산나트륨과 계피산칼륨이다.

주요 에스테르(ester)는 계피산메틸·계피산에틸·계피산벤질과 계피산프로필로서 향료에 사용한다.

*
* *

이 호에는 순도(純度 : purity) 85% 미만(건조한 물품으로 계산한 것)의 올레산과 순도(純度) 90% 미만(건조한 물품으로 계산한 것)의 그 밖의 지방산(fatty acid)은 **제외한다(제3823호)**.

29.17 -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11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7.12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7.13 -- 아젤라산 · 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2917.14 -- 무수말레산

2917.19 -- 기타

2917.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32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2917.33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2917.34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2917.35 -- 무수프탈산

2917.36 -- 테레프탈산과 그 염

2917.37 -- 테레프탈산디메틸

2917.39 -- 기타

이 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무수물(無水物 : anhydride)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 에스테르(ester) ·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A) 비환식 폴리카르복시산(polycarboxylic acid)과 그 에스테르 · 염과 유도체

(1) **옥살산(oxalic acid)**(HOCCOOH) : 독성이고 무취 · 무색 · 투명의 미세한 결정체로서 직물과 가죽의 표백제 · 직물공업의 매염제(媒染劑 : mordant)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옥살산의 주된 염은 옥살산암모늄 · 옥살산칼륨 · 옥살산나트륨 · 옥살산칼슘 · 옥살산철과 옥살산암모늄철이다.

옥살산의 주된 에스테르(ester)는 옥살산디메틸과 옥살산디에틸이다.

(2) **아디프산(adipic acid)**(HOOC(CH₂)₄COOH) : 무색 바늘 모양의 결정체로서 특히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아미드)제조에 사용한다.

(3) **아젤라산(azelaic acid)*** : 황색부터 백색까지 결정성 가루로서 ; 특히 플라스틱[알키드수지(alkyd resin) · 폴리아미드(polyamide) · 폴리우렌탄] 제조에 사용하고 그 밖의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4) **세바스산(sebacic acid)** : 백색 나뭇잎 모양이고 ; 특히 플라스틱[알키드수지(alkyd resin) · 말레산(maleic)과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폴리우레탄]의 안정제로 사용하며, 플라스틱제조에 사용한다.
- (5) **무수말레산(maleic anhydride)*** : 무색 결정성 덩어리 상태로서 플라스틱(폴리에스테르(polyester)) 제조와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6) **말레산(maleic acid)(HOOCCH=CHCOOH)** : 무색의 큰 결정체나 블록 모양으로서 ; 특히 특정의 플라스틱[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 제조에 사용한다.
- (7) **말론산(malonic acid)(HOOCCH₂COOH)** : 무색의 큰 플레이크(flake) 모양의 결정체이다. 말론산의 가장 중요한 에스테르(ester)에는 말론산 디에틸(diethyl malonate)이 포함되어 유기 합성(예: 바르비투르산염과 같은 의약품의 합성)에 사용한다.
- (8) **숙신산(succinic acid)(HOOC(CH₂)₂COOH)** : 무색 · 무취 · 투명의 결정체로서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B) 포화지 환식 · 불포화지 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 폴리카르복시산과 그 에스테르 · 염과 그 밖의 유도체

(C) 방향족(芳香族) 폴리카르복시산(polycarboxylic acid)과 그 에스테르 · 염과 그 밖의 유도체

- (1)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C₆H₄(CO)₂O)*** : 반투명한 백색 바늘 모양의 결정체 · 덩어리 모양의 결정체나 백색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 ; 대단히 가볍고 부피가 크며 특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으며 유기 합성 [플라스틱물질(알키드수지(alkyd resin))과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 등]에 사용한다.
- (2) **벤젠디카르복시산(benzenedicarboxylic acid)(오르토 · 메타와 파라)(C₆H₄(COOH)₂)** : 오르토벤젠디카르복시산은 보통 프탈산(phthalic acid)이라 부르고(오르토프탈산), 메타벤젠디카르복시산은 보통 이소프탈산(isophthalic acid)이라 부르며 파라벤젠디카르복시산은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이라 부른다. 이들은 결정체로서 합성 착색물질 제조와 플라스틱(알키드수지) 제조와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의 에스테르(esters)에는 디메틸 · 디에틸 · 디부틸(디-노르말부틸 · 디이소부틸 등) · 디옥틸[디-노르말-옥틸 · 디이소옥틸 · 비스(2-에틸헥실) 등] · 디노닐(디-노르말-노닐 · 디이소노닐 등), 디데실(디-노르말-데실 등)이나 디시클로헥실 오르토프탈레이트와 오르토프탈산의 그 밖의 에스테르(esters)[예: 에틸렌 글리콜에스테르(ethylene glycol esters)의 프탈레이트와 테레프탈산*의 디메틸과 그 밖의 에스테르(esters)]를 포함한다.
- (3) **디클로로프탈산(dichlorophthalic acid)과 테트라클로로프탈산(tetrachlorophthalic acid)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29.18 -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11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8.12 -- 타르타르산

2918.13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2918.14 -- 시트르산

2918.15 --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2918.16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8.17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2918.18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2918.19 -- 기타

-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21 -- 살리실산과 그 염

2918.22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8.23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2918.29 -- 기타

2918.30 - 알데히드 ·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기타

2918.91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8.99 -- 기타

이 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그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 에스테르(esters) ·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추가 산소관능(additional oxygen function)”은 앞 절에 열거된 하나나 그 이상의 산소관능기 [알코올 · 에테르(ether) · 페놀(phenol) · 알데히드 · 케톤(ketone) 등의 관능기]를 함유한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을 말한다.

(A) 알코올 관능의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이들의 에스테르·염과 그 밖의 유도체

이들은 알코올관능기(alcohol function)(-CH₂OH, >CHOH 나 >COH)와 산관능기(acid function)(-COOH)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의 관능기는 이들 고유의 성질에 따라 각각 반응하고 있는데 알코올의 관능기를 갖는 화합물은 에테르(ether)·에스테르(ester)와 그 밖의 유도체를 생성하며 산의 관능기를 갖는 것은 염과 에스테르(ester) 등을 형성한다. 이들의 주된 알코올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락트산(lactic acid)**(CH₃CH(OH)COOH) : 포도당이나 사탕수수 전화(轉化 : invert)당의 **락트산발효(lactic ferment)**에 의하여 제조한다. 대단히 흡습성이 강한 결정질의 덩어리 모양이나 찌득찌득한 시럽 상태의 액체로서 무색이나 옅은 황색이다. 의약용·염색·원피 탈회제로 사용하며 공업용의 것·상거래 관습상의 것·의약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포함한다. **공업용의 산**은 황갈색에서 갈색에 이르는 색을 가지며 불쾌한 산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상거래 관습상이나 의약용의 산**은 일반적으로 락트산을 75%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염은 락트산칼슘(의약용)·락트산스트론튬·락트산마그네슘·락트산아연·락트산안티몬·락트산철과 락트산비스무트이다.

이들의 에스테르(esters)에는 락트산에틸과 락트산부틸이 포함되며, 바니시(varnish)의 용제로 사용한다.

락트산수은(mercury lactate)은 제외한다(제2852호).

- (2) **타르타르산(tartaric acid)**(HOOCCH(OH)CH(OH)COOH) : 무색 투명의 결정체로서 염색용·사진용·베이킹 파우더의 제조·포도 재배용과 의약용에 사용한다.

타르타르산의 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타르타르산나트륨(sodium tartrate)**
 (b) **타르타르산칼륨(potassium tartrate)**
 (c) **정제 타르타르산수소칼륨(refined potassium hydrogen tartrate)**(타르타르의 크림)
 가공하지 않은 타르타르(아르골 : Argol)은 제외한다(제2307호).
 (d) **타르타르산칼슘(calcium tartrate)** : 작은 결정체
 가공하지 않은 타르타르산칼슘(calcium tartrate)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824호).
 (e) **타르타르산칼륨안티몬(antimony potassium tartrate : emetic)**, **타르타르산칼륨나트륨(sodium potassium tartrate : sel de Seignette)**과 **타르타르산철칼륨(iron potassium tartrate)**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ester)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타르타르산에틸(ethyl tartrate)**
 (ii) **타르타르산부틸(butyl tartrate)**
 (iii) **타르타르산펜틸(pentyl tartrate)**

- (3) **구연산*** : 감귤류의 과일주스 내에 유리상태(遊離狀態 : free state)로 존재하며, 또한 포도당이나 자당을 몇몇 종의 citromyces속의 미생물에 의하여 발효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무색의 큰 결정체로서 투명한 프리즘상이거나 결정질의 백색·무취의 가루로서 음료 제조용·방직 공업용·포도 재배와 의약용이나 시트르산염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의 염(salt)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시트르산리튬(lithium citrate)

(b) 시트르산칼슘(calcium citrate)

가공하지 않은 시트르산 칼슘(crude calcium citrate)은 제외한다(제3824호).

(c) 시트르산알루미늄(aluminium citrate) : 염색의 매염제(媒染劑 : mordant)로 사용한다.

(d) 시트르산철(iron citrate) : 사진용으로 사용한다.

시트르산의 주된 에스테르(ester)는 다음과 같다.

(i) 시트르산트리에틸(triethyl citrate)

(ii) 시트르산트리부틸(tributyl citrate)

(4) 글루콘산(gluconic acid)과 그 염 : 글루콘산은 일반적으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며, 그것의 칼슘 염은 의약품·세척용과 콘크리트(concrete)침가제로 사용한다.

(5) 글루코헵톤산(glucoheptonic acid)과 그 염(예: 글루코헵톤산칼슘)

(6) 페닐글리콜산(만데르산)[phenylglycolic acid(mandelic acid)*]

(7) 말산(malic acid)($\text{HOOCCH}(\text{OH})\text{CH}_2\text{COOH}$) : 조해성(潮解性)의 무색 결정성 덩어리로서 ; 유기 합성·의약품 등에 사용한다.

(8)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 흰색의 결정(結晶)으로 된 방향성산(芳香性酸 : aromatic acid)으로서 많은 1차 알코올에 녹는다. 유기 합성에 사용하거나 의약품으로 사용하며 또 화학작용제의 제조에서 선구물질(precursor)로도 사용한다.

(B)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이들의 에스테르·염과 그 밖의 유도체

페놀산(phenol-acid)은 핵 속에 산기(-COOH)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산기(-OH)를 같이 함유하고 있는 환식(방향족)산으로서, 가장 단순한 페놀산은 ($\text{HOC}_6\text{H}_4\text{COOH}$)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다.

(I) 살리실산(오르토하이드록시벤조산)($\text{HOC}_6\text{H}_4\text{COOH}$)* : 백색 결정체이며 부피가 큰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가벼운 백색 무취의 가루로서 의약품과 또한 아조(azo)염료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살리실산(salicylic acid)의 가장 중요한 염은 다음과 같다.

(a) 살리실산나트륨(sodium salicylate) : 결정 모양의 가루이나 백색 무취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b) 살리실산비스무트(bismuth salicylate) : 백색 무취의 가루로서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살리실산의 가장 중요한 에스테르(ester)는 다음과 같다.

(a) 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 : 노루발풀(wintergreen)유의 구성체이다. 강한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진 기름같은 무색의 액체로서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b) 살리실산페닐(살롤)[phenyl salicylate(salol)] : 약간의 좋은 방향성(芳香性) 냄새를 지닌 무색의 플레이크(flakes) 모양과 같은 결정체이다. 의약품과 방부제로 사용한다.

(c) 살리실산에틸 · 살리실산나프틸 · 살리실산부틸 · 살리실산아밀 · 살리실산벤질 · 살리실산보닐 · 살리실산시트로벨릴 · 살리실산제라닐 · 살리실산멘틸 · 살리실산로디닐

(II)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o*-acetylsalicylic acid)**($\text{CH}_3\text{C}(\text{O})\text{OC}_6\text{H}_4\text{COOH}$) : 결정성의 백색 가루로서 냄새가 없으며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III) **술포살리실산(살리실술포산)[sulphosalicylic acid(salicylsulphonic acid)]**

(IV) **파라히드록시벤조산(*p*-hydroxybenzoic acid)** : 결정체

이의 주된 에스테르(ester)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벤조산파라히드록시메틸(methyl *p*-hydroxybenzoate)**

(2) **벤조산파라히드록시에틸(ethyl *p*-hydroxybenzoate)**

(3) **벤조산파라히드록시프로필(propyl *p*-hydroxybenzoate)**

이들 에스테르(ester)는 보존제(방부제)로 사용한다.

(V) **크레오소트산(cresotic acid)**

(VI) **아세틸 오르토크레오소트산(acetyl-*o*-cresotic acid)**

(VII) **갈산(gallic acid)**($(\text{HO})_3\text{C}_6\text{H}_2\text{COOH}$) : 오배자 열매로부터 얻어지며 미세한 건질 광택성의 무색이나 미황색의 무취 결정체로서 염료와 잉크 · 사진 · 유연 · 매염제(媒染劑 : mordant) 등에 사용한다.

이의 주된 염과 에스테르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갈산염기성비스무트(basic bismuth gallate)** : 레몬 황색 · 무취 · 수렴성과 흡습성의 무정형 가루로서 ; 의약에 사용한다.

(2) **갈산메틸(methyl gallate)** : 결정체로서 소독제 · 수렴제와 안과용으로 사용한다.

(3) **갈산프로필(propyl gallate)**

(VIII) **히드록시 나프토산(hydroxynaphthoic acid)**

(IX) **히드록시안트라센카르복시산(hydroxyanthracenecarboxylic acid)**

(C) **알데히드(aldehyde)나 케톤(ketone)관능기의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그들의 에스테르 · 염과 그 밖의 유도체**

(1) **알데히드산(aldehyde-acid)** : 알데히드기(-CHO)와 산기(-COOH)를 모두 가지고 있다.

(2) **케톤산(ketone-acid)** : 케톤기(>C=O)와 산기(-COOH)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들 산(acid)의 가장 중요한 에스테르(ester)는 에틸아세토아세테이트(ethyl aceto-acetate)와 그것의 나트륨 유도체이다.

(D) 그 밖의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이들의 에스테르(ester) · 염과 그 밖의 유도체

아니스산(anisic acid)($\text{CH}_3\text{OC}_6\text{H}_4\text{COOH}$) : 아니스알데히드(anisaldehyde) · 아네톨(anethole)과 아니스열매유(aniseed oil)를 산화하여 얻어진다. 약간의 아네톨(anethole) 냄새가 나며 무색의 결정체로서 ; 방부제 · 의약용 · 염료제조용으로 사용한다.

제8절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19호 - 제2920호)

총설

(A) 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의 에스테르(ester)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나 페놀(phenol)이 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과 반응하여 형성한다. 이들의 일반식은 알코올이나 페놀기인 R과 산기로 알려져 있는 무기산분자의 잔유기인 X로 된 (ROX)로 표현한다.

질산의 산기는 (-NO₂) · 황산의 산기는 (=SO₂) · 인산의 산기는 (≡PO), 탄산의 산기는 (>CO)이다.

이 절에는 이 류의 이후 호에 해당되는 에스테르(ester)는 제외한다.

(B) 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의 에스테르(ester) 염

이들은 다만, 비(非)금속(non-metal) 무기폴리염기산(황산 · 인산 · 규산 등)의 에스테르(ester)에서만 얻어진다. 폴리염기산은 한 개 이상의 치환성의 산성 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원소가 에스테르화(esterified)되지 않았을 때에는 산에스테르(acid ester)로 된다.

이들 산에스테르(acid ester)를 적당히 처리하면 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inorganic acid) 에스테르(ester)염을 생성한다.

반면 일염기산인 아질산과 질산은 단지 중성 에스테르(ester)염을 생성한다.

29.19 -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2919.90 - 기타

삼염기성의 인산은 한 개 · 두 개나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ester)화 함으로써 세 가지 형태의 인산 에스테르(ester)를 형성한다.

이 에스테르(esters)와 그들의 염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글리세로인산(glycerophosphoric acid) : 인산의 잔유기와 글리세린의 한 개의 1차 알코올기가 포화된 것으로부터 유도한다.

이들 에스테르(ester)의 가장 중요한 염은 강장제로서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예:

- (a) 글리세로인산 칼슘(calcium glycerophosphate)
- (b) 글리세로인산 철(iron glycerophosphate)
- (c) 글리세로인산 나트륨(sodium glycerophosphate)
- (2) **이노시톨헥사인산(inositolhexaphosphoric acid)과 헥사인산이노시톨(inositolhexaphosphate)**
- (3) **인산트리부틸(tributyl phosphate)*** : 무색·무취의 액체로서 ;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로 사용한다.
- (4) **인산트리페닐(triphenyl phosphate)** : 무색·무취의 결정체로서 ; 플라스틱(예: 셀룰로이드) 제조용과 방수용 종이 등에 사용한다.
- (5) **인산트리토릴(tritoyl phosphate)** : 무색이나 황색의 액체로서 ; 셀룰로오스(cellulose) 물품과 합성수지의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와 부유선광제 등으로 사용한다.
- (6) **인산트릭실릴(trixylyl phosphate)**
- (7) **인산트리구아이야실(triguaiacyl phosphate)**
- (8) **락토포스페이트(lactophosphate)** : 예를 들면, 락토인산칼슘(calcium lactophosphate)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0 -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2920.19 -- 기타

-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21 -- 디메틸 포스파이트

2920.22 -- 디에틸 포스파이트

2920.23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2920.24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2920.29 -- 기타

2920.30 - 엔도설판(ISO)

2920.90 - 기타

이 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음이온이 오로지 비(非)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의 에스테르(ester)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은 제외한다.

- (a) 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일반적으로 제2903호에 분류한다)
- (b) 이 류의 이후 호에 포함되는 에스테르[예: 이소시아산 에스테르(“ester” of isocyanic acid)] (제2929호)와 황화수소의 “에스테르”(일반적으로 제2930호)

이 호에 해당되는 에스테르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thiophosphoric ester**(phosphorothioate)]와 이들의 염 · (나트륨 오르토,오르토-디부틸- 및 오르토,오르토-디토릴디티오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B)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 아인산 에스테르나 유기아인산(organophosphite)의 일반구조식은 $P(OR)_3$ 이며, 인산의 에스테르로 간주될 수 있다. 인산(磷酸)*의 메틸과 에틸 에스테르는 화학적 합성에 의하여 신경 가스로 전환될 수 있다.

(C) **황산에스테르(sulphuric ester)와 이들의 염**

황산에스테르는 중성이나 산성인 경우가 있다.

- (1) **황산수소메틸(methyl hydrogen sulphate)**(CH_3OSO_2OH) : 기름 상태의 액체
- (2) **황산디메틸(dimethyl sulphate)**($(CH_3O)_2SO_2$)* : 약간의 박하 냄새를 지닌 무색이나 미황색의 액체로서 독성 · 부식성과 최루성이 있어 호흡관을 자극한다.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3) **황산수소에틸(ethyl hydrogen sulphate)**($C_2H_5OSO_2OH$) : 시럽 상태의 액체
- (4) **황산디에틸(diethyl sulphate)**($(C_2H_5O)_2SO_2$) : 박하 냄새를 지닌 액체

(D) 아질산(nitrous)과 질산(nitric) 에스테르*

아질산에스테르(nitrous ester)는 방향성(芳香性) 냄새를 지닌 액체이다. 예: 아질산메틸 · 아질산에틸 · 아질산프로필 · 아질산부틸과 아질산펜틸

질산에스테르(nitric ester)는 좋은 냄새를 지닌 유동성 액체로서 ; 급하게 가열하면 분해된다. 이들은 질산메틸 · 질산에틸 · 질산프로필 · 질산부틸과 질산펜틸을 포함한다.

니트로글리세롤* · 테트라니트로펜타에리스리톨(penthrite)과 니트로글리콜(nitroglycol)은 혼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 조제된 폭약의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제3602호).

(E) 탄산(carbonic)이나 과탄산(peroxocarbonic)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탄산에스테르는 산성이나 중성이다.

- (1) **탄산디구아이야실(diguaiacyl carbonate)*** : 약간의 구아이야콜(guaiacol) 냄새가 나는 맑은 백색의 결정질 가루로서 의약품과 합성 향료의 중간체로 사용한다.
- (2) **오르토탄산테트라에틸(tetraethyl orthocarbonate)(C(OC₂H₅)₄)**
- (3) **탄산디에틸(diethyl carbonate)(C(OC₂H₅)₂)**
- (4) **비스(4-터셔리-부틸시클로헥실)페록소디카보네이트[bis(4-tert-butylcyclohexyl) peroxodicarbonate]**
- (5) **터셔리-부틸퍼옥시 2-에틸헥실 카보네이트**

클로로탄산에틸(ethyl chlorocarbonate)[또는 클로로포름산에틸(ethyl chloroformate)]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915호)**.

(F) 규산에스테르(silicic acid ester)와 이들의 염[규산테트라에틸(tetraethyl silicate) 등]*

이 호에는 산관능 금속 수산화물[예: 티탄 테트라-노르말-부톡시드(titanium tetra-*n*-butoxide)(티탄산 테트라부틸로도 알려져 있다)]의 알코올레이트(alcoholate)나 에스테르(ester)는 **분류하지 않는다(제2905호)***.

제 9 절

질소관능화합물

(제2921호 - 제2929호)

총설

이 절에는 질소관능화합물로서, 아민·아미드·이미드 화합물을 분류한다. 그러나 단지 질소관능으로서 니트로기(nitro group)나 니트로소기(nitroso group)를 갖는 화합물은 **제외한다**.

29.21 - 아민관능화합물(+)*

-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 --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2921.12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2921.13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2921.14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2921.19 -- 기타

-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21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2921.22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2921.29 -- 기타

2921.30 -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 -- 아닐린과 그 염

2921.42 --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2921.43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4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5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6 --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2921.49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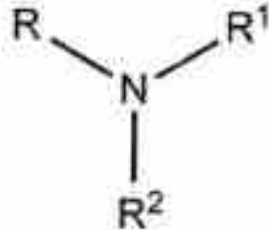
-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51 --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para-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59 - 기타

아민(amine)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두 개·세 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알킬기나 아릴기인 R(메틸·에틸·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관능기].

암모니아 내에서 한 개의 수소원자만이 치환된 것은 1차아민(RNH₂) ; 두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2차아민(R-NH-R) ; 세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3차아민이다.



퀴논이민옥심(quinoneimine oxime)의 호변성이체(tautomeric form) 내에서 반응하는 니트로소아민은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아민염(예: 질산염·초산염·시트르산염)과 아민의 치환유도체[예: 할로젠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를 분류하며 ;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에 해당되는 산소관능화합물과 그들의 염(제2922호)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아민 관능기의 수소원자 한 개 이상이 한 개 이상의 할로젠(halogen)·술폰(sulpho)(-SO₃H)·니트로(nitro)(-NO₂)·니트로소(nitroso)(-NO)기나 이들의 화합물에 의해 치환된 치환 유도체도 **제외한다**.

이 호의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이들의 염 중 아조(azo)염료 제조용의 것으로서 표준 농도로 희석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비환식모노아민(acyclic monoamine)과 그 유도체와 ; 이들의 염

- (1) **메틸아민(methylamine)**(CH₃NH₂) : 강한 암모니아의 냄새를 지닌 무색 가연성의 가스로서 ; 유기염료 제조와 유연(tanning) 공업에 사용한다.
- (2) **디메틸아민(dimethylamine)**((CH₃)₂NH) : 메틸아민(methylamine)과 유사한 것으로서 ; 고무가황촉진제,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CH₃)₃N) : 메틸아민과 유사한 것으로서 ;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4) **에틸아민(ethylamine)***
- (5) **디에틸아민(diethylamine)**
- (6) **알릴이소프로필아민(allylisopropylamine)**
- (7) **2-(N,N-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히드로클로라이드, 2-(N,N-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히드로클로라이드와 2-(N,N-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히드로클로라이드**

(B) 비환식폴리아민(ACYCLIC POLYAMINES)과 그 유도체와 ; 이들의 염

- (1)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H₂NCH₂CH₂NH₂)(약간의 암모니아 냄새를 지닌 부식성의 무색 액체)와 그의 염

- (2) **헥사메틸렌디아민(hexamethylenediamine)**($H_2N(CH_2)_6NH_2$)과 그 염* : 특이한 냄새를 지닌 결정성 바늘 모양이나 길다란 판 모양으로서 피부에 닿으면 독성작용으로 상처를 입으며 ; 인조섬유(폴리아미드)의 제조에 사용한다.

(C)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모노아민(cycloterpenic monoamine)·폴리아민(polyamine)과 그 유도체와 이들의 염

여기에는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디메틸아미노시클로헥산(dimethyl aminocyclohexane)** 등을 포함한다.

(D) 방향족(芳香族)모노아민(monoamine)과 그 유도체와 이들의 염

- (1) **아닐린(aniline)**($C_6H_5NH_2$)(페닐아민)과 이들의 염* : 약간의 방향성(芳香性) 냄새를 지닌 무색의 유상 액체로서 염료와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한다.

아닐린유도체는 광범위하게 염료 중간체로 사용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 클로로아닐린
- (b)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 메타와 파라아미노벤젠술폰산(예: 술폰닐산)
- (c)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 니트로아닐린 등
- (d)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아민 관능기의 수소원자가 아닌)가 한 개 이상의 니트로소기(예: 니트로소 아닐린·메틸 니트로소 아닐린)로 치환된 것
- (e) **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
- (f) **알킬유도체(alkyl derivative)**(엔-메틸아닐린과 엔,엔-디메틸아닐린 ; 엔-에틸아닐린과 엔,엔-디에틸아닐린)

- (2) **톨루이딘(toluidine)***

- (3) **디페닐아민(diphenylamine)**($(C_6H_5)_2NH$) : 2차아민과 같은 것으로서 무색의 작은 나뭇잎 모양 결정체이며 ; 유기 합성(염료 등)에 사용한다.

- (4) **1-나프틸아민(1-naphthylamine)**(알파-나프틸아민)($C_{10}H_7NH_2$)* : 백색 바늘 모양의 결정체·백색·갈색의 덩어리 모양이나 결정질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얻어지며 ; 좋은 쏘는 듯한 냄새를 지니고 있다. 빛에 노출되면 연보라색으로 변하고 유기 합성과 동광의 부유선광제로 사용한다.

- (5)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베타-나프틸아민)($C_{10}H_7NH_2$)* : 백색 가루나 진주빛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 무취이며 ; 유기 합성(염료 등)에 사용한다. 이 물질은 암증을 유발케하므로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한다.

- (6) **크실리딘(xylidine)**

- (7) **암페타민(INN)(amfetamine, amphetamine)**

(E)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그 유도체와 이들의 염

- (1) 오르토-, 메타-, 파라-페닐렌디아민($C_6H_4(NH_2)_2$)*
- (a) **오르토-페닐렌디아민**(*o*-phenylenediamine) : 무색 단사(單斜)형 결정체로서 공기 중에서 암색으로 변색한다.
- (b) **메타-페닐렌디아민**(*m*-phenylenediamine) : 무색 바늘 모양으로서 공기 중에서 적색으로 변색한다.
- (c)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 백색부터 밝은 자주색까지의 결정체
- (2) **디아미노톨루엔**(diaminotoluene)($CH_3C_6H_3(NH_2)_2$)
- (3) **엔-알킬페닐렌디아민**(*N*-alkylphenylenediamine)(예: 엔,엔-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 (4) **엔-알킬톨릴렌디아민**(*N*-alkyltolenylenediamine)(예: 엔,엔-디에틸-3,4-톨릴렌디아민)
- (5) **벤지딘**(benzidine)($H_2NC_6H_4C_6H_4NH_2$) : 좋은 냄새를 지닌 광택성 백색 결정질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염료 제조와 분석 화학에 사용한다.
- (6) **폴리아민**(polyamine) : 디-(di-)와 트리페닐메탄(triphenylmethane)과 이들의 동족체로부터 얻으며 그들의 유도체에는 테트라메틸과 테트라에틸디아미노 디페닐메탄 등이 있다.
- (7) **아미노(amino-)와 디아미노디페닐아민(diaminodiphenylamine)**
- (8) **디아미노스틸벤**(diaminostilbene)

이 호의 물품 중 국제기구에서 정신신경계작용 물질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표시하고 있다.



[소호해설]

소호 제2921.42호부터 제2921.49호까지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의 탄화수소유도체는 아민 질소의 수소원자 한 개나 두 개 모두를 알킬이나 시클로알킬기만으로 치환하여 얻어지는 유도체이다. 그러므로 한 개 이상의 방향족(芳香族) 핵을 가진 치환기는 알킬사슬에 의해 아민 질소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외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크실리딘(xylidine)은 아닐린(aniline)의 유도체(소호 제2921.42호)나 톨루이딘(toluidine)의 유도체(소호 제2921.43호)가 아닌 “그 밖의(Other)”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monoamine)으로 소호 제2921.4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9.22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2922.12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2922.14 -- 텍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의 염

2922.15 -- 트리에탄올아민

2922.16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2922.17 --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2922.18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2922.19 -- 기타

-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2922.29 -- 기타

-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 --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2922.39 -- 기타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2 -- 글루탐산과 그 염

2922.43 -- 안트라닐산과 그 염

2922.44 -- 틸리딘(INN)과 그 염

2922.49 -- 기타

2922.50 -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oxygen-function amino-compound)”은 아민관능 외에도 제29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아세탈·알데히드·케톤(ketone)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 화합물과 이들의 유기 에스테르(ester)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산소관능을 함유한 아민화합물의 치환유도체인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에스테르와 염을 분류한다.

이 호의 디아조화하여 얻은 아민과 그 염을 아조(azo) 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유기염료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2류)**.

**(A) 아미노 알코올(amino-alcohol)과 그 에테르(ether) ;
에스테르(ester)와 이들의 염**

이들 화합물은 탄소 원자와 결합된 한 개 이상의 수산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미노기를 함유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알코올, 이들의 에테르(ether)나 에스테르(ester)나 이들 관능의 화합물만을 함유하고 있다. 어미 아미노 알코올에 부착되어 있는 비(非)어미 세그먼트(non-parent segment)에 존재하는 어떠한 산소관능도 품목분류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 (1) **모노에탄올아민(monoethanolamine)**($\text{NH}_2(\text{CH}_2\text{CH}_2\text{OH})^*$) : 다소 점성질인 무색 액체로서 ; 의약품과 비누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text{NH}(\text{CH}_2\text{CH}_2\text{OH})_2$) : 무색 결정체나 엷은 액체로서 ; 산가스(acid gas)의 흡수용 · 가죽 유연용과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3)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text{N}(\text{CH}_2\text{CH}_2\text{OH})_3$) : 점성질의 액체로서 비누와 유화 공업의 염기로 쓰이며 섬유 드레싱과 완성 가공에 사용한다.
- (4)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 과불화옥탄 술폰산(PFOS)의 암모늄염이다(제 2904 호, 제 2923 호, 제 2935 호, 제 3808 호와 제 3824 호 참조).
- (5)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 (6) **2-(N,N-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이나 N,N-디이소프로필에탄올아민**[$((\text{CH}_3)_2\text{CH})_2\text{NCH}_2\text{CH}_2\text{OH}$] : 무색에서부터 약간 노란색의 액체상태이다.
- (7) **(2-벤조일옥시-2-메틸 부틸)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2-benzoyloxy-2-methylbutyl)dimethylammonium chloride] : 결정질의 백색 가루로서 국부 마취제로 사용한다.
- (8) **메클로페녹세이트(meclofenoxate)**
- (9) **아르놀롤(arnolol)**
- (10) **사포그리레이트(sarpogrelate)**
- (11) **아릴에탄올아민(arylethanolamine)**
- (12) **테트라메틸(tetramethyl-)과 테트라에틸디아미노벤즈히드롤(tetraethyldiaminobenzhydrol)**
- (13) **질산아미노에틸(aminoethyl nitrate)**

**(B) 아미노나프톨(amino-naphthol), 그 밖의 아미노페놀(amino-phenol)과
그 에테르(ether), 에스테르(ester)와 ; 이들의 염**

이들은 1이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아미노기($-\text{NH}_2$)에 의하여 치환된 페놀화합물을 말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페놀관능, 이들의 에테르(ethers) · 에스테르(esters) 또는 이들의 복합 관능만을 함유하고 있다. 모체 아미노 나프톨이나 그 밖의 아미노 페놀(amino-phenol)에 부착되어 있는 비(非)어미 세그먼트(non-parent segment)에 존재하는 어떠한 산소관능도 품목분류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 (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aminohydroxynaphthalenesulphonic acid), 예:***
 - (a) **7-아미노-1-나프톨-3 술폰산(감마산)**
 - (b) **8-아미노-1-나프톨-3,6-디술폰산(H산)**
- (2) **오르토-, 메타-(o-, m-)와 파라-아미노페놀(p-aminophenol)**
- (3) **아미노-오르토-, 메타-(amino-o-, m-)와 파라크레졸(p-cresol)**
- (4) **디아미노페놀(diaminophenol)**

아미노페놀(amino-phenol)의 에테르(ether)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아니시딘(anisidine)***
- (b) **디아니시딘(비아니시딘)[dianisidines(bianisidine)]***
- (c) **페네티딘(phenetidine)**
- (d) **크레시딘(cresidine)**
- (e) **5-니트로-2-프로폭시아닐린(2-아미노-4-니트로페놀 *n*-프로필에테르)[5-nitro-2-propoxyaniline (2-amino-4-nitrophenol *n*-propylether)]**

이 호에는 디페닐아민(diphenylamine)의 히드록시(hydroxy) 유도체와 이들의 염을 포함한다.

(C) 아미노알데히드(amino-aldehyde) · 아미노케톤(amino-ketone)과 아미노퀴논(amino-quinone)과 이들의 염

이들은 각각 알데히드산(-CHO) · 케톤기(>C=O)이나 퀴논기(제2914호의 해설 참조)와 결합된 아미노기를 함유하고 있다.

- (1) **아미노벤즈알데히드(aminobenzaldehyde)**
- (2) **테트라메틸(tetramethyl-)과 테트라에틸디아미노벤조페논(tetraethyldiaminobenzophenone)**
- (3) **아미노(amino-)와 디아미노안트라퀴논(diaminoanthraquinone)**
- (4) **안트림이드(anthrimide)**

(D) 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르(esters)와 이들의 염

이들 화합물은 한 개 이상의 카르복시산 관능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민 관능기를 가진다. 카르복시산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은 산관능기로 간주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산(acids), 이들의 에스테르(esters)나 무수물(無水物 : anhydrides)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이나 이들의 복합관능만을 함유하고 있다. 모체 아미노산에 부착되어 있는 모체가 아닌 세그먼트에 존재하는 어떠한 산소관능도 품목분류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아미노산의 에스테르 · 염과 치환유도체로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리신(디아미노-노르말-헥사노산)[lysine(diamino-*n*-hexanoic acid)]*** : 무색 결정체로서 실크검(silk gum)과 그 밖의 단백질 분해생성물
- (2) **글루탐산(glutamic acid)** : 단백질 분해물로서 글루텐(gluten)에서 얻어진다. 의약품과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결정체
- (3) **글리신(glycine)(아미노아세트산 ; 글리코콜)(H₂NCH₂COOH)** : 크고 무색의 일정한 모양의 결정체로서 유기 합성 등에 사용한다.
- (4) **사르코신(sarcosine)(CH₃NHCH₂COOH)** : 글리신의 메틸유도체로서 ; 프리즘 모양의 결정체이다.

- (5) 알라닌(2-아미노프로피온산)[alanine(2-aminopropionic acid)] : 단단한 바늘 모양
- (6) 베타알라닌(3-아미노프로피온산)[β-alanine(3-aminopropionic acid)] : 결정체
- (7)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 (8) 발린(알파 아미노이소발레르산)[valine(α-aminoisovaleric acid)] : 결정체
- (9) 류우신(알파 아미노이소카프로산)[leucine(α-aminoisocaproic acid)] : 단백질을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하여 얻어지며 백색 젓빛갈의 결정체 이소류우신(isoleucine)
- (10)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 : 결정 모양
- (11) 오르토-아미노벤조산(안트라닐산)[o-aminobenzoic acid(anthranilic acid)] : 합성하여 얻어지며 ; 합성 인디고(indigo) 제조에 사용한다. 이의 유도체 중에는 안트라닐산메틸(metyl anthranilate)이 있다.
- (12) 메타아미노벤조산(m-aminobenzoic acid)
- (13) 파라아미노벤조산(p-aminobenzoic acid) : 염료 제조·인조 향료와 마취제의 조제에 사용하며 ; 또한 비타민 활성으로 인해 의약에 사용한다. 이의 유도체에는 파라아미노벤조산에틸과 부틸을 포함한다. 염산프로카인(procaine hydrochloride)(디에틸아미노에틸 파라아미노벤조에이트 히드로클로라이드) : 무색과 무취의 소결정체(小結晶體)이며 안과와 치과용 국부마취제로서 사용한다.
- (14) 페닐글리신(phenylglycine)
- (15) 리사디메이트(lisadimate)

(E) 아미노알코올페놀(amino-alcohol-phenol) · 아미노산페놀(amino-acid-phenol)과 그 밖의 산소관능의 아미노화합물

이들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티로신(파라히드록시페닐알라닌)[tyrosine(p-hydroxyphenylalanine)]
- (2) 세린(알파아미노베타히드록시프로피온산)[serine(α-amino-β-hydroxypropionic acid)] : 실크검(silk gum)과 여러 가지 단백질 분해 생성물
- (3) 아미노살리실산(aminosalicylic acid)[5-아미노살리실산(5-aminosalicylic acid)과 4-아미노살리실산(4-aminosalicylic acid)을 포함한다] : 결정질의 가루로서, 5-아미노살리실산은 무기합성[예: 아조(azo)와 황화염료 제조]에 사용하고, 4-아미노살리실산의 나트륨염은 폐결핵 치료 의약에 사용한다.
- (4) 메디폭사민(N,N-디메틸-2,2-디페녹시에틸아민)[medifoxamine(N,N-dimethyl-2,2-diphenoxyethylamine)] : 아세탈 관능을 가진 아민 화합물
- (5) 프로폭사케인(propoxycaine)

*
* *

이 호의 물품 중 국제기구에서 마약 혹은 정신신경계작용물질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표시하고 있다.



[소호해설]

소호 제2922.11호부터 제2922.50호까지

이 소호에 있어서, 에테르, 유기산 에스테르나 무기산 에스테르 관능들은 아민류에 결합한 산소 관능의 위치에 따라 알코올·페놀이나 산 관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에, 아민관능과 에테르나 에스테르 관능의 산소원자 사이에 위치한 분자 안에 존재하는 산소관능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민 관능을 함유하고 있는 부분을 “모체 (parent)” 세그먼트라 한다. 예를 들면, 3-(2-아미노에톡시)프로피온산 화합물에 있어서 모체(parent)세그먼트는 아미노에탄올이며, 품목분류할 때 카르복실산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 화합물은 아미노-알코올의 에테르로서 소호 제2922.19호에 분류한다. 만일 화합물이 두 개 이상의 에테르나 에스테르관능을 함유하고 있다면, 분자는 품목분류를 위해 각 에테르나 에스테르기의 산소 원자에 따라 세그먼트화하고 유일하게 고려할 산소 관능기는 아민관능으로서 같은 세그먼트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만약 화합물이 동일한 에테르나 에스테르관능에 결합된 둘 이상의 아민관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번호 순서상 가장 마지막 소호에 분류하며 ; 그 소호는 각 아민관능과 관련하여 에테르나 에스테르 관능을 알코올이나 페놀, 산관능으로 간주함으로써 결정한다.

29.23 -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923.10 - 콜린과 그 염
- 2923.2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 2923.3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 2923.4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 2923.90 - 기타

유기 제4암모늄염은 $R^1R^2R^3R^4N^+$ 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R^1 \cdot R^2 \cdot R^3 \cdot R^4$ 는 각각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알킬이나 아릴기(메틸·에틸·토릴 등)를 나타낸다.

또한 양이온은 수산이온(OH⁻)과 결합하여 일반식 $R_4N^+OH^-$ 으로 표현되는 **수산화 제4암모늄(quaternary ammonium hydroxide)**이 되고 이는 무기 모체인 수산화암모늄(NH₄OH)에 상당하는 물질이다.

나머지의 원자가는 그 밖의 음이온(염소·브롬·요오드 등)과 결합하여 **제4암모늄염(quaternary ammonium salt)**을 형성한다.

제4암모늄염기의 가장 중요한 염과 유도체는 다음과 같다.

- (1) **콜린(choline)·이의 염과 유도체*** : 수산화히드록시 에틸트리메틸암모늄(hydroxyethyltrimethylammonium hydroxide)은 담즙·뇌·알의 노른자위(egg-yolk)와 모든 신선한 씨앗으로부터 얻어지고, 이 화합물로부터 그 밖의 대단히 중요한 생물학적 물질이 유도된다(예: 아세틸콜린과 메틸콜린).
- (2) **레시틴(lecithin)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이들은 글리세린산이 올레산·팔미트산과 그 밖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소염기로 부터 얻어진 에스테르(ester)(인지질 : phosphatide)이다. 일반적으로 황갈색 왁스질의 피상으로서 에탄올에 가용성이다. 레시틴(lecithin)은 알의 노른자위(오보레시틴)과 동물과 식물 조직에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상거래 관습상의 레시틴(lecithin)은 대두 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60%에서 70%까지)·대두유·지방산과 탄소화물의 혼합 구성물이다. 상거래 관습상의 대두 레시틴은 밝은 갈색이며 다소간 점성질 이고, 만약 대두유를 아세톤으로 추출하면 황색의 알갱이 모양이 된다.

오보레시틴(oveolecithin)은 의약용으로 사용하며 상거래 관습상의 대두 레시틴은 식품·동물사료공업·페인트·석유공업 등에서 유화제, 분산제등으로 사용된다.
- (3)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과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 이것 들은 과불화옥탄 술폰산(PFOS)의 4차 암모늄염이다(제2904호, 제2922호, 제2935호, 제3808호와 제3824호 참조).
- (4) **요드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iodide)((CH₃)₄NI)**
- (5)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CH₃)₄NOH)**
- (6) **포름산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unium formate)(HCOON(CH₃)₄)** : 의약용 으로 사용한다.
- (7) **베타인(betaine)** : 제4분자내염의 하나이며 베타인 염산염은 의약용·화장품용·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한다.

29.24 -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 -- 메프로바메이트(INN)

2924.12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2924.19 -- 기타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3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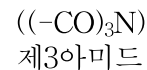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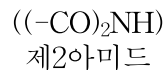
2924.24 -- 에치나메이트(INN)

2924.25 -- 알라클로르(ISO)

2924.29 -- 기타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카르본산(carbonic acid)의 아미드유도체를 분류한다(제2929호의 그 밖의 무기산의 아미드 유도체는 제외한다).

아미드는 다음의 특유한 기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NH₂)기나 (>NH)기의 수소는 알킬이나 아릴기에 의하여 치환되고 ; 이들은 엔-치환아미드이다.

이 호의 일부 아미드는 디아조화하여 얻은 아민기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 아미드와 이들의 염으로서 아조(azo)염료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

우레인(ureine)은 요소의 -NH₂기에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를 지환식(alicyclic) 화합물이나 아릴(aryl)기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우레이드(ureide)는 요소의 -NH₂기에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를 산기로서 치환하여 얻는다.

그러나, 주로 비료로 사용하는 요소(H₂NCONH₂)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순수한 것일지라도 제3102호나 제3105호에 분류한다.

(A) 비환식아미드

(1) 아세트아미드(acetamide)

(2) **아스파라긴(asparagine)** : 아스파르트산의 모노아미드(mono-amide)로서 특정 식물로부터 추출되는 결정체이다.

(3) **열린 사슬 우레이드**(브로모디에틸아세틸우레아 · 브로모이소발레릴우레아)[open chain ureide (bromodiethylacetylurea, bromoisovalerylurea)]

(4) 카바민에틸(우레탄)[ethyl carbamate(urethan)]

(5) 글루타민(glutamine)

이 호에는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아나디아미드)[1-cyanoguanidine(dicyandiamide)]은 제외한다(제2926호).

(B) 환식아미드

(1) 우레인(ureine)과 우레이드(ureide)

주요한 우레인(ureine)은 다음과 같다.

(i) 파라에톡시페닐우레아(덜신)[*p*-ethoxyphenylurea(dulcin)]

(ii) 디에틸디페닐우레아(센트랄라이트)[diethyldiphenylurea(centralite)]*

(2) 아세트아닐리드(acetanilide)·메틸(methyl-)과 에틸아세트아닐리드(ethylacetanilide)·아세트파라페네티디드(acet-*p*-phenetidide)(페나세틴)·파라아세트아미도페놀(*p*-acetamidophenol)과 파라아세트아미도살롤(*p*-acetamidosalol)은 의약에 사용한다.

(3) 페닐아세트아미드(phenylacetamide)

(4) 환식아민의 엔-아세토아세틸 유도체(예: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 히드록시나프토산의 아미드(예: 3-히드록시-2-나프타아닐리드) ; 디아트리지산(diatrizoic acid)과 그 염[방사선 검사용 조영제(造影劑 : opacifier)로 사용한다]. 이 화합물의 일부는 상거래 관습상 “아릴리드(arylides)”라 한다.

(5) 2-아세트아미도벤조산(2-acetamidobenzoic acid) : 무색에서 황색 빛을 띤 바늘 모양, 플레이트(flake) 모양이나 장사방형의 크리스탈이다. 메타쿠알론(methaqualone)(INN)의 제조에 선구물질(precursor)로 사용한다(제29류 끝에 선구물질의 목록 참조).

(6) 알라클로르(ISO) : 2-클로로-*N*-(2,6-디에틸페닐)-*N*-(메톡시메틸)아세트아미드.(C₁₄H₂₀ClNO₂).

이 호에는 헤테로환식 우레이드(ureide)[예: 말로닐우레아(malonylurea)(바르비투르산)]와 히단토인(hydantoin)은 제외한다(제2933호).

*
* *

이 호의 물품 중 국제기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표시하고 있다.

29.25 -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 -- 사카린과 그 염

2925.12 -- 구루테치미드(INN)

2925.19 -- 기타

-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 -- 클로르디메포름(ISO)

2925.29 -- 기타

(A) 이미드(imide)

이미드(imide)는 (R=NH)의 일반식을 가지며 R은 이염기성아실기이다.

- (1) **사카린(saccharin)이나 1,2-벤지소티아졸린-3-온-1, 1-디옥사이드(1,2-benzisothiazolin-3-one 1,1-dioxide)와 그 염*** : 사카린은 무취의 백색 가루로서 단 맛이 강하다. 이의 나트륨염과 암모늄염은 사카린보다 단 맛은 약한 편이나 용해성은 더 크다. 이들 물품의 한 종류만으로 조성된 정(tablet)은 이 호에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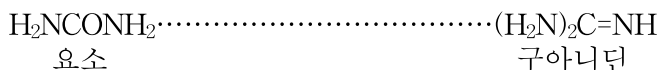
그러나 식이요법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사카린이나 사카린의 염과 식품(예: 유당)의 혼합물로 조성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2106호**에 분류한다[제38류의 주 제1호나목 참조]. 사카린(saccharin)이나 사카린(saccharin)의 염과 식품이 아닌 물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르타르산으로 조성된 조제품은 **제3824호**에 분류한다.

- (2) **숙신이미드(succinimide)** : 화학합성에 사용한다.
 (3) **프탈이미드(phthalimide)** : 화학합성에 사용한다.
 (4) **글루테티미드(glutethimide)*** : 정신신경계 작용물질(제29류 끝의 표 참조)
 무기산의 유기이미드 유도체는 제2929호에 분류한다.

(B) 이민(imine)

이민은 이미드(imides) 같이 =NH기를 특징으로 하지만 비산성 유기기에 결합되어 있다 (R₂C=NH).

- (1) **구아니딘(guanidine)*** : 암모니아에 시안아미드(cyanamide)를 반응시켜 **구아니딘(guanidine)**으로 알려진 **이미노우레아(imino-urea)**가 조성된다. 이는(>C=O)기의 산소가 이미노기(=NH)와 치환된 요소로부터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구아니딘은 또한 단백질을 산화하여 형성되며 합성으로도 얻어진다. 무색·조해성(潮解性)의 결정체이다.

그 유도체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디페닐구아니딘(diphenylguanidine)*** : 고무가황 촉진제
- (b) **디-오르토-톨릴구아니딘(di-*o*-tolylguanidine)** : 고무가황 촉진제
- (c) **오르토-톨릴디구아니드(*o*-tolylidiguanide)** : 고무가황 촉진제
- (2) **알드이민(aldimine)** : 이들은 일반식, $(RCH=NR^1)$ 을 가지며 R과 R¹은 알킬기나 아릴기(메틸, 에틸, 페닐 등)이고 때로는 수소일 경우도 있다.

이들은 “**시프 염기(Schiff's base)**”로 알려진 물품을 구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a) **에틸리덴아닐린(ethylideneaniline)**
- (b) **부틸리덴아닐린(butylideneaniline)**
- (c) **알돌-알파-(aldol- α -)와 베타-나프틸아민(β -naphthylamine)**
- (d) **에틸리덴파라톨루이딘(ethylidene-*p*-toluidine)**

이들은 모두 고무공업에 사용한다.

- (3) **이미노에테르(imino ether)***
- (4) **아미딘(amidine)**
- (5) **2,6-디클로로페놀린도페놀(2,6-dichlorophenolindophenol)**

그러나 이 호에는 알드이민(aldimine)의 환식중합체를 **제외한다(제2933호)**.

29.26 -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 아크릴로니트릴

2926.2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아ندی아미드)

2926.3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2926.4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2926.90 - 기타

니트릴의 일반식은 $RC\equiv N$ 로서 R은 알킬이나 아릴기이며 때로는 질소일 경우도 있다. 모노-·디-·트리-니트릴은 분자 당 한 개·두 개·세 개의 시안기(-CN)를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 무색 유동성 액체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의 중합체와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는 **제외하며** ; 이들은 인조 플라스틱물질(제39류)이나 합성고무(제40류)를 구성한다.

(2)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아ندی아미드)[1-cyanoguanidine(dicyandiamide)]*** : 순백색 결정체

(3) **아세트 알데히드 시아노히드린 (acetaldehyde cyanohydrin)**

(4) **아세토 니트릴(acetonitrile)**

(5) **아디포 니트릴(adiponitrile)**

(6) **아미노페닐아세토니트릴(aminophenylacetoneitrile)**

(7) **벤조니트릴(benzonitrile)**

(8) **아세톤시아노히드린(acetone cyanohydrin)**

(9) **시아노아세트아미드(cyanoacetamide)**

(10) **시아노피나콜린(cyanopinacoline)**

(11) **히드록시페닐아세토니트릴(hydroxyphenylacetoneitrile)**

(12) **이미노디아세토니트릴(iminodiacetonitrile)**

(13) **니트로벤조니트릴(nitrobenzonitrile)**

(14) **나프토니트릴(naphthonitrile)**

(15) **니트로페닐아세토니트릴(nitrophenylacetoneitrile)**

(16) **페닐시안아미드(phenylcyanamide)**

(17) **트리시아노트리메틸아민(tricyanotrimethylamine)**

(18) **메사돈-중간체(methadone-intermediate)(INN)**- 제29류 끝의 표 참조

(19)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APAAN)*** : 3-옥소-2-페닐부탄니트릴. 페이지 VI-29-List I-14. III. 선구물질(precursors)의 목록 참조

29.27 -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방향족(芳香族) 계열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들 화합물은 이중 결합으로 연결된 두 개의 질소원자를 함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다.

(A) 디아조화합물(diazo-compound)

이들 화합물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 : 일반식은 $RN_2^+X^-$ 으로 표현되고, 이때 R은 유기기이고 X^- 는 음이온을 말하며 예를 들면, 다음의 것들이다.

(a) **염화벤젠 디아조늄(benzenediazonium chloride)***

(b) **사플루오르화붕산 벤젠디아조늄(benzenediazonium tetrafluoroborate)**

이 호에는 안정화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아조(azo)염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예: 황산나트륨과 같은 중성 염을 첨가하는 등) 디아조늄도 분류한다.

(2) 일반식 RN_2 의 화합물. 여기서 R은 유기기이며, 예를 들면, 다음의 것들이다.

(a) **디아조메탄(diazomethane)**

(b) **디아조초산에틸(ethyl diazoacetate)**

(3) 일반식 $R^1-N=N-N \begin{matrix} \diagup R^2 \\ \diagdown R^3 \end{matrix}$ 의 화합물. 여기서 R^1, R^2 는 유기기이고 R^3 는 유기기나 수소이며 예를 들면, 다음의 것들이다.

(a) **디아조 아미노벤젠(diazoaminobenzene)**

(b) **엔-메틸디아조아미노벤젠(N-methyldiazoaminobenzene)**

(c) **3,3-디페닐-1-파라-톨릴트리아진(3,3-diphenyl-1-p-tolyltriazene)**

} (여기서 $R^1=R^2$)

(B) 아조화합물(azo-compound)*

이들 화합물은 $R^1-N=N-R^2$ 의 일반식을 가지며, 여기서 R^1 과 R^2 는 유기기로서 이들의 탄소 원자 한 개가 질소 원자에 직접 연결된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의 것들이다.

(1) **아조벤젠(azobenzene)**

(2) **아조톨루엔(azotoluene)**

(3) **아조나프탈렌(azonaphthalene)**

(4) **2,2'-디메틸-2,2'-아조디프로피오니트릴(2,2'-dimethyl-2,2'-azodipropionitrile)**

(5) **아미노아조벤젠술폰산(aminoazobenzenesulphonic acid)**

(6) **파라-아미노아조벤젠(p-aminoazobenzene)**

} (여기서 $R^1=R^2$)

R^1 과 R^2 기는 그 자체에 $-N=N-$ 기를 더 가질 수도 있다[비스아조-(bisazo-) · 트리스아조-(trisazo-) 등의 화합물].

(C) 아족시화합물(azoxy-compound)*

이들 화합물은 $R^1-N_2O-R^2$ 의 일반식을 가지며, 여기서 산소 원자는 두 개의 질소원자 중 한 개의 질소 원자에 결합되고 R^1 과 R^2 는 일반적으로 아릴기이다. 아족시(azoxy)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엷은 황색 결정체 물질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아족시벤젠(azoxybenzene)*
- (2) 아족시톨루엔(azoxytoluene)
- (3) 파라아족시아니솔(*p*-azoxyanisole)
- (4) 파라오족시페네톨(*p*-azoxyphenetole)
- (5) 아족시벤조산(azoxybenzoic acid)
- (6) 아족시신남산(azoxycinnamic acid)
- (7) 아족시톨루이딘(azoxytoluidine)

*
* *

디아조-(dialzo-)와 아조-(azo-) 화합물은 아조(azo)염료 형성의 기본원료가 된다. 이들은 치환 유도체를 형성하며 이들도 또한 여기에 포함한다.

유기색소(organic colouring matter)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32류에 분류한다.

29.28 -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히드라진(hydrazine)과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그 자체와 그 무기염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제2825호)**, 다만, 그들의 유기유도체**만**이 이 호에 분류한다.

히드라진(H_2NNH_2)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 원자를 치환하여 ($RHNNH_2$)와 ($RHNNHR^1$)의 유도체를 형성하며 여기서 R과 R^1 은 유기기를 나타낸다.

히드록실아민(H_2NOH)은 또한 하나 이상의 수소 원자를 치환함으로써 많은 종류의 유도체를 형성할 수 있다.

퀴논옥심(quinone oxime)의 호변유도체인 니트로소페놀(nitrosophenol)과 퀴논 이민옥심(quinoneimine oxime)의 호변 이성체인 니트로소아민(nitrosoamine)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908호와 제2921호 해설 참조)**.

히드라진(hydrazine)과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의 유기 유도체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페닐히드라진(phenylhydrazine)***
- (2) **톨릴히드라진(tolylhydrazine)**
- (3) **메틸페닐히드라진(methylphenylhydrazine)**
- (4) **브로모페닐히드라진(bromophenylhydrazine)**
- (5) **벤질페닐히드라진(benzylphenylhydrazine)**
- (6) **나프틸히드라진(naphthylhydrazine)**
- (7) **페닐히드록실아민(phenylhydroxylamine)**
- (8) **니트로소페닐히드록실아민(nitrosophenylhydroxylamine)**
- (9) **디메틸글리옥심(dimethylglyoxime)**
- (10) **페닐글루코사존(phenylglucosazone)**
- (11) **페닐글리옥심(phenylglyoxime)***
- (12) **아세트알데히드페닐히드라존(acetaldehyde phenylhydrazone)**
- (13) **아세트알독심(acetaldoxime)**
- (14) **아세토페녹심(acetophenoxime)**
- (15) **아세트옥심(acetoxime)**
- (16) **벤즈알데히드세미카르바존(benzaldehyde semicarbazone)**
- (17) **벤즈알독심(benzaldoxime)**
- (18) **벤질리덴아세트옥심(benzylideneacetoxime)**
- (19) **히드록삼산(hydroxamic acid)**
- (20) **디페닐카르바지드(diphenylcarbazide)**

- (21) 세미카르바지드(카르바밀히드라진)[semicarbazide(carbamylhydrazine)]
- (22) 페닐세미카르바지드(1-카르바밀-2-페닐히드라진)[phenylsemicarbazide(1-carbamyl-2-phenylhydrazine)]
- (23) 제4히드라지늄(quaternary hydrazinium)의 염(salt)과 염기(base)
- (24)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 히드라지드(hydrazide)
- (25) 히드라지딘(hydrazidines)

29.29 -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 이소시아네이트

2929.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이 그룹의 화학품은 단일이나 다가 관능기의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를 포함한다. 둘이나 그 보다 많은 관능기를 가진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즉, 메틸렌 디페닐이소시아네이트(MDI : methylene diphenyl isocyanate) ·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DI : hexamethylene diisocyanate)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 toluene diisocyanate)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이량체(toluene diisocyanate dimer)는 폴리우레탄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 호는 폴리(poly)[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phenyl isocyanate)][조(粗 : crude) MDI나 중합 MDI]를 제외한다(제3909호).

(2) 이소시아나이드(카르빌아민)[isocyanide(carbylamine)]

(3)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 아지화물

(4) 무기산(탄산 제외)의 유기치환아미드 유도체와 유기산의 유기치환아미드 유도체

(5) 시클람산칼슘(시클로헥실-술폰아미드 칼슘)[calcium cyclamate(calcium cyclohexylsulphamate)]

(6) 옥타메틸피로포스포르아미드(octamethylpyrophosphoramidate)(OMPA)

(7) 디메틸니트로사민(dimethylnitrosamine)

(8) 메틸트리니트로페닐니트라민(테트릴)[methyltrinitrophenylnitramine(tetryl)] 등 :
폭약으로 쓰인다.

(9) 니트로구아니딘(nitroguanidine) : 폭약

제 10절

유기-무기화합물 · 헤테로고리화합물 · 핵산과 이들의 염, 술폰아מיד (제2930호 - 제2935호)

총설

제2930호와 제2931호에 분류하는 유기-무기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 수소, 산소나 질소원자를 함유하는 이외에 이들의 금속이나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l)원자(예: 황, 비소, 수은, 납, 철 등)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된 유기화합물이다.

제2930호(유기 황화합물)와 제2931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수소, 산소와 질소가 아니고 다만, 탄소가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복합유도체)의 특성을 부여하는 황이나 할로겐의 원자와 직접 결합된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와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화합물유도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헤테로고리기를 유도한다.

(A) 5원 고리(환)

(1) 한 개의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함유하는 것

- (a) 산소원자 : **푸란기(furan group)**(제2932호)*
- (b) 황원자 : **티오펜기(thiophen group)**(제2934호)*
- (c) 질소원자 : **피롤기(pyrrole group)**(제2933호)*

(2) 두 개의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함유하는 것

- (a) 한 개의 산소원자와 한 개의 질소원자 : **옥사졸(oxazole)과 이소옥사졸기(isoxazole group)**(제2934호)*
- (b) 한 개의 황원자와 한 개의 질소원자 : **티아졸기(thiazole group)**(제2934호)*
- (c) 두 개의 질소원자 : **이미다졸(imidazole group)과 피라졸기(pyrazole group)**(제2933호)*

(3) 세 개나 그 이상의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함유하는 것

- (a) 한 개의 산소원자와 두 개의 질소원자 : **푸라잔기(furazan group)**(제2934호)*
- (b) 세 개의 질소원자 : **트리아졸기(triazole group)**(제2933호)*
- (c) 네 개의 질소원자 : **테트라졸기(tetrazole group)**(제2933호)*

(B) 6원 고리(환)

(1) 한 개의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함유하는 것

- (a) 산소원자 : 피란기(pyran group)(제2932호)*
- (b) 황원자 : 티인기(티아피란기)[thiin(thiapyran) group](제2934호)*
- (c) 질소원자 : 피리딘기(pyridine group)(제2933호)*

(2) 두 개의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함유하는 것

- (a) 한 개의 산소원자와 한 개의 질소원자 : 옥사진기(oxazine group)(제2934호)*
- (b) 한 개의 황원자와 한 개의 질소원자 : 티아진기(thiazine group)(제2934호)*
- (c) 두 개의 질소원자 : 피리다진(pyridazine group), 피리미딘(pyrimidine group), 피라진기(pyrazine group)와 피페라진기(piperazine group)(제2933호)*

(C) 그 밖의 그 이상의 복수고리식화합물

이들은 그 밖의 탄소고리화합물과 5원이나 6원의 헤테로고리화합물(heterocyclic compounds)을 축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예를 들면, 다음의 그룹을 포함한다.

- (a) 쿠마론(coumarone)(제2932호)*
- (b) 벤조피란(Benzopyran)(제2932호)*
- (c) 크산텐(xanthene)(제2932호)*
- (d) 인돌(indole)(제2933호)*
- (e) 퀴놀린(quinoline)과 이소퀴놀린(isoquinoline)(제2933호)*
- (f) 아크리딘(acridine)(제2933호)*
- (g) 벤조티오펜(티오나프텐)[benzothiophene(thionaphthene)](제2934호)*
- (h) 인다졸(indazole)(제2933호)*
- (ij) 벤즈이미다졸(benzimidazole)(제2933호)*
- (k) 페나진(phenazine)(제2933호)*
- (l) 페녹사진(phenoxazine)(제2934호)*
- (m) 벤족사졸(benzoxazole)(제2934호)*
- (n) 카르바졸(carbazole)(제2933호)*
- (o) 퀴나졸린(quinazoline)(제2933호)*
- (p) 벤조티아졸(benzothiazole)(제2934호)*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의 분류에 있어 하나 이상의 헤테로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경우 오직 하나의 헤테로고리만이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 내의 소호에서 특정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을 때에는 그 화합물은 해당 소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두 개 이상의 헤테로고리가 소호수준에서 특정한 명칭이 부여되어 있을 때에는 그 화합물은 번호순서에서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 *

29.30 - 유기-황 화합물

- 2930.10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티올
- 2930.20 -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 2930.30 - 티우람모노설파이드 · 티우람디설파이드 · 티우람테트라설파이드
- 2930.40 - 메티오닌
- 2930.60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티올
- 2930.7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 설파이드 [티오디글리콜(INN)]
- 2930.8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 2930.90 - 기타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 (이 류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그 밖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A)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dithiocarbonate(xanthate)]*

이들은 디티오카르본산의 모노에스테르염이나 디에스테르이며 (ROC(S)SR¹)의 일반식으로 표현되며 R은 유기기이며 R¹은 금속원소(나트륨 · 칼륨 등)나 유기기(有機基)를 말한다.

- (1) **에틸디티오카르본산나트륨**(에틸크산틴산염)[**sodium ethyldithiocarbonate(ethylxanthate)**]* : 무정형으로서 합성 인디고(indigo) 제조와 부유선광제로 사용한다.
- (2) **에틸디티오카르본산염칼륨**(에틸크산틴산염)[**potassium ethyldithiocarbonate(ethylxanthate)**] : 기름같은 황색 결정체로서 납과 아연광의 부유선광제와 방충제와 곰팡이 방지제로 사용한다.
- (3) **메틸- · 부틸- · 펜틸- · 벤질-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methyl-, butyl-, pentyl-, benzyldithiocarbonate(xanth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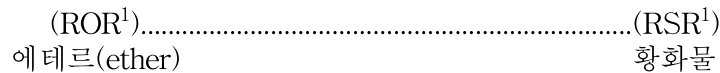
(B) 티오카르바메이트(thiocarbamate) · 디티오카르바메이트(dithiocarbamate)와 티우람 설파이드(thiuram sulphide)

- (1) **티오카르바메이트(thiocarbamate)** : NH₂기의 수소원자가 알킬이나 아릴기로 치환되었는지에 상관 없이 티오카르바민산(H₂NCOSH나 H₂NCSOH)(유리상태(遊離狀態 : free state)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염과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dithiocarbamate)***[NH₂기의 수소원자가 알킬이나 아릴기로 치환되었는지에 상관 없이 디티오카르바민산의 염과 에스테르(ester)를 포함한다] : 치환된 디티오카르바민산의 금속 염(예: 디부틸디티오카르바마이트 아연)은 고무 산업에서 가황촉진제로 사용한다.

- (3) **티우람 모노-·디-·테트라 숄파이드(thiuram mono-, di-, tetrasulphide)** : 알킬치환유도체
[예: 이황화테트라에틸티우람(tetraethylthiuram disulphide)은 고무가황촉진제로 사용한다]

(C) 황화물[티오에테르(thioether)]*

이들은 산소원자가 황 한 개와 치환된 에테르(ether)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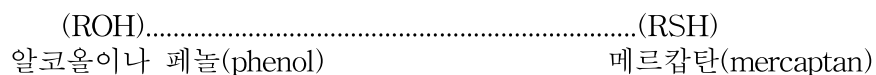
- (1) **메티오닌(methionine)*** : 백색 작은 판 모양이나 가루로서, 아미노산의 일종이며, 인체 영양의 필수성분으로서 인체 내에서는 합성되지 않는다.
- (2) **황화디메틸(dimethyl sulphide)과 황화디페닐(diphenyl sulphide)** : 매우 불쾌한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
- (3) **비스(2-히드록시에틸)숄파이드나 티오디글리콜(thiodiglycol)(INN)** : 액체 상태로서 날염(捺染 : textile printing) 염료의 용제(solvent)로 사용한다.
- (4) **티오아닐린(thioaniline)이나 4,4'-황화디아미노디페닐 숄파이드(4,4'-diaminodiphenyl sulphide)**

(D) 티오아미드(thioamide)*

- (1) **티오우레아(thiourea)(H₂NCSNH₂)** : 티오카르본산의 디아미드이며 이들은 요소의 황 유사체로서 광택성의 백색 결정이며 사진용·염료 조제·염료 중간체의 조제·의료용품 공업에 사용한다.
- (2) **티오카르바닐리드(디페닐티오우레아)[thiocarbanilide(diphenylthiourea)]*** : 무색 결정체의 정(tablet)이나 무정형의 백색 가루로 염료공업[황화염료·인디고(indigo)]에서 염료중간체의 조제용·합성의료용품 ; 고무가황촉진제와 부유선광제에 사용한다.
- (3) **디오르토톨릴티오우레아(di-*o*-tolylthiourea)** : 백색 가루로서 물에 녹지 않으며 ; 고무가황촉진제로 사용한다.

(E) 티올(메르캡탄)[thiols(mercaptan)]

이들 황 화합물은 산소원자가 황 원자와 치환된 알코올이나 페놀과 일치한다.



- (1) **티오알코올(thioalcohol)** : 알코올과 같이(-CH₂SH)·(>CHSH)·(>CSH)기를 각각 함유하고 있는 제1티오알코올·제2티오알코올·제3티오알코올이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무색이나 황색의 액체로서 좋지 못한 냄새를 지니고 있다.

- (a) **메탄티올(메틸메르캡탄)[methanethiol(methyl mercaptan)]**

- (b) **에탄티올(에틸메르캡탄)[ethanethiol(ethyl mercaptan)]**

(c) **부탄티올**(부틸메르캡탄)[**butanethiol**(butyl mercaptan)]

(d) **펜탄티올**(펜틸메르캡탄)[**pentanethiol**(pentyl mercaptan)]

(2) **티오펜놀(thiophenol)**

(a) **티오펜놀(thiophenol)**(C_6H_5SH)

(b) **오르토머카프토벤조산(*o*-mercaptobenzoic acid)** : 때로는 티오살리실산(thiosalicylic acid)으로 불려진다.

(F) 티오알데히드(thioaldehyde)

일반식은 (RCSH)이다.

(G) 티오케톤(thioketone)

일반식은 (RCSR¹)이다.

(H) 티오산(thioacid)

일반식은 (RCOSH이나 RCOH와 또한 RCSSH)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디티오살리실산(dithiosalicylic acid)은 (HOC_6H_4CSSH)이지만 명칭은 가끔 (오르토-카르복시페닐)디설파이드로도 사용한다.

(I) 술피산(sulphinic acid), 술피사이드(sulphoxide)와 술피온(sulphone)

이들의 일반식은 (RSO₂H), (RSOR¹)와 (RSO₂R¹)로 각각 표현한다.

예를 들면, 술피날(sulphonal)은 무색의 결정체로서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K) 이소티오시아네이트(isothiocyanate)

일반식은 (RN=CS)이다.

이들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isothiocyanic acid*)의 “에스테르(ester)”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에틸(ethyl *isothiocyanate*) ;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페닐(phenyl *isothiocyanate*) ;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알릴(allyl *isothiocyanate*)(인조 겨자유)을 포함한다.

29.31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 2931.10 - 테트라메틸납, 테트라에틸납
-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 2931.4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 2931.4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 2931.4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 2931.44 -- 메틸포스포산
- 2931.45 --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 2931.46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란-2,4,6-트리옥사이드
- 2931.47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 2931.48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 2931.49 -- 기타
 -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 2931.51 --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 2931.52 --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 2931.53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네이트
- 2931.54 -- 트리클로르폰(ISO)
- 2931.59 -- 기타
- 293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테트라메틸납(tetramethyl lead)**($Pb(CH_3)_4$)과 테트라에틸납(tetraethyl lead)($Pb(C_2H_5)_4$) : 휘발성의 액체이며 순수 상태의 것은 무색, 공업용은 황색이며 ; 이들은 독성이 있고 ; 매우 유효한 안티녹제(anti-knock agent)이다.
- (2) **트리부틸틴(tributyltin)** 화합물
- (3) **유기-인 화합물**

이것들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된 인 원자를 하나 이상 함유하는 유기 화합물이다.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I)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예:

- (a)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와 메틸포스포산**
- (b)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 (c)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란-2,4,6-트리옥사이드
- (d)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 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 (e)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 (f) 나트륨 3-(트리히드록시실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II)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예:

- (a)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 (b)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 (c) 오르토-(3-클로로프로필) 오르토-[4-니트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 메틸 포스포노티오네이트
- (d) 트리클로르폰(ISO)
- (e) 오르토-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사린)
- (f) 오르토-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소만)

(I)과 (II)에서 예로 언급한 화학물질의 교역은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트리클로르폰(ISO)을 제외하고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화학무기협약)에 의해 규제된다.

- (4)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radical)의 최소 한 개의 탄소 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silane)과 실록산(siloxane)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 물질은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 중합된다. 실란(silane)은 클로로실란(예: 디메틸디클로로실란)·알코옥시실란(예: 메틸트리메톡시실란)·알킬이나 아릴 실란(예: 디페닐실렌디올, 테트라메틸실란) 그리고 다른 다(多)기(아미노·니트릴·옥시라닐·옥시모·아세톡시 등)실란을 포함한다. 실록산(siloxane)은 헥사메틸디실록산·옥타메틸트리실록산·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데카메틸시클로트리실록산과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록산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헥사메틸디실라제인과 유기-디실란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무기 규소화합물은 제외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제28류에 분류한다(예: 실리콘테트라클로라이드(SiCl₄)는 제2812호에, 트리클로로실란(SiHCl₃)은 제2853호에 분류한다). 실리시산에스테르(silicic acid ester)와 그 염은 제2920호에 분류한다. 화학적으로 별개의 단일 유기-규소화합물은 인위적인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제382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한 개 이상의 규소-산소결합의 분자를 가지고 그리고 직접 규소-탄소결합에 의한 라디칼을 가진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 실리콘은 제3910호에 분류한다.

(5) 카르보닐철(iron carbonyl)·카르보닐 니켈(nickel carbonyl) 등

(6) 유기비소화합물

- (a) 메틸아르손산(methylarsonic acid)(CH₃AsO(OH)₂)과 그 염 : 플레이크(flake) 모양의 결정체로서 메틸아르손산나트륨과 같은 결정질 염을 이룬다(무색이며 의약품에 사용한다).
- (b) 카코딜산(cacodylic acid)과 그 염 : 이들은 카코딜(cacodyl)로 알려져 있는(-As(CH₃)₂)기를 함유하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카코딜산은 무색무취의 결정으로 주요 염은 카코딜산나트륨(백색 결정 가루)이다.

- (c) 파라아미노페닐아르손산(*p*-aminophenylarsonic acid)(H₂NC₆H₄AsO(OH)₂)과 그 염 : 광택성 백색 바늘 모양의 결정성이며 이의 주요 염은 파라아미노페닐아르손산나트륨으로서 백색 무취의 결정 가루이다. 의약품으로 특히 불면증에 사용한다.

(d) **아미노히드록시페닐아르손산(amino-hydroxyphenylarsonic acid) · 이들의 포르밀(formyl)**과 아세틸(acetyl) 유도체와 이들의 염

(e) **아르세노벤젠(arsenobenzene)**($C_6H_5As=AsC_6H_5$)과 이의 유도체 : 아조화합물(azo compound)과 유사한 동족화합물이나 아조기(-N=N-) 대신에 비소기(-As=As-)를 함유하고 있다.

(7) **오르토-요도소벤조산(o-iodosobenzoic acid)**

(8) **메탈알킬(metal alkyl) · 메탈풀레렌(metal fullerene)과 메탈로센(metallocene)**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제외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분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된 황원자 이외에 분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된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l)이나 금속 원자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도 **제외한다**[예: 폰노포스(fonofos)(ISO)](**제2930호** 참조).

이 호에는 그 분자 중에 하나나 그 이상의 수은 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HgX)기를 함유하고 있는 [X는 무기나 유기산 잔기(殘基 : residue)] 유기-수은화합물은 **제외한다(제2852호)**.

29.32 -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 테트라히드로푸란

2932.12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2932.13 --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2932.14 -- 수크랄로스

2932.19 -- 기타

2932.20 - 락톤

- 기타

2932.91 -- 이소사프롤

2932.92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2932.93 -- 피페로날

2932.94 -- 사프롤

2932.95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2932.96 -- 카보퓨란(ISO)

2932.99 -- 기타

이 호에 분류하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불지 아니한 푸란 고리(furan ring) 구조를 갖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 무색 액체

(2) **2-푸르알데히드(2-furaldehyde)**(푸르푸랄)* : 곡물의 기운을 황산과 함께 증류하여 얻어진다. 특유의 방향취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서 공기 속에서는 황색과 갈색으로 변한다. 광물유(mineral oil)의 정제·합성수지의 제조·질산셀룰로오스와 바니시(vernish)의 용제(溶劑 : solvent)·살충제 등으로 사용한다.

(3) **푸르푸릴알코올(furfuryl alcohol)*** : 무색의 액체로 공기 중에 노출하면 어두운 색으로 되고 진한 광산(mineral acids)에 맹렬히 반응하며, 질산 셀룰로오스의 용제(溶劑 : solvent), 바니시(vernish)와 보호용 방수도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4)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tetrahydrofurfuryl alcohol)*** : 무색 액체

(5) **수크랄로스(sucralose)*** (1,6-디클로로-1,6-디데옥시-베타-D-프룩토피라노실-4-클로로-4-데옥시-알파-D-갈락토피라노사이드) : 냄새가 없으며, 흰색이나 거의 흰색에 가까운 결정성(結晶性 : crystalline) 가루이다. 주로 의약품과 음식, 특히 당뇨병 환자의 치료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이다.

(6) **푸란(furan)**

(B) 락톤(lactone)*

이들 화합물은 알코올이나 페놀 관능을 가진 카르복시산의 내부 에스테르(internal esters)로 볼 수 있으며 물분자를 제거하여 형성된다. 분자는 한 고리 안에 한 개 이상의 에스테르 관능(ester function)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존재하는 에스테르 관능(ester function)의 수에 따라 모노-·디-·트리락톤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염기산을 가진 다가 알코올의 환식 에스테르(esters)는 **제외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락톤(lactone)은 상당히 안정된 화합물이나, 락톤고리는 알칼리를 사용하면 쉽게 열리는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쿠마린(coumarin)(1,2-벤조피론)*** : 오르토쿠마린산의 락톤이며 백색 플레이크(flake) 모양의 결정체이다. 향료·의약에 사용하는 것 외에 버터·피마자유(castor oil)·의약품 등에 향미제로 사용한다. 또한 식물의 발아를 억제한다.
- (b) **메틸쿠마린(methylcoumarin)** : 쿠마린과 성상이 같으며 향료에 사용한다.
- (c) **에틸쿠마린(ethylcoumarin)**
- (d) **디쿠마롤(dicoumarol)(디쿠마린)** : 결정체이며 항응고제로서 외과용에 사용한다.
- (e) **7-히드록시 쿠마린(7-hydroxycoumarin)(엠펠리페론)** : 백색 결정체로서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피부를 타지 않게 하는 로션과 크림에 사용한다.
- (f) **디히드록시 쿠마린(dihydroxycoumarin)(에스쿨리틴과 다프니틴)** : 결정체로서 온수에 잘 녹는다.
 디히드록시 쿠마린의 글루코시드(에스쿨린과 다프닌)는 **제2938호**에 분류한다.
- (g) **노나락톤(nonalactone)** : 무색이나 황색의 액체로서 향료에 사용한다.
- (h) **운데카락톤(undecalactone)** : 노나락톤과 성상과 용도가 유사하다.
- (ij) **부티로락톤(butyrolactone)(히드로부틸산 락톤)** : 상쾌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서 물에 잘 혼합된다. 합성수지의 중간생성물 및 용제(溶劑 : solvent)이다. 페인트의 얼룩 제거제의 제조와 석유공업에 사용한다.
- (k) **프로피오노락톤(propionolactone)** : 액체로서 물에 녹으며 소독제(disinfectant), 멸균제(sterilising agent)와 살균제(germicide)로 사용한다.
- (l) **글루쿠로노락톤(glucuronolactone)(글루쿠론산 락톤)** : 백색 가루로 물에 잘 녹으며 의약과 성장인자로 사용한다.
- (m) **D-글루코놀락톤(D-gluconolactone)(글루콘산 δ-락톤)** : 녹는 결정체로서 식품의 산성제로 사용한다.
- (n) **판토락톤(pantolactone)** : 녹는 결정체로서 판토텐산의 정류에 사용한다.
- (o) **산토닌(santonin)** : 산토닌 산의 내부 에스테르(internal esters)로서 아르테미시아 시나(Artemisia cina)의 건조한 화관인 산토니카로부터 추출된다. 무색·무취의 결정체로서 ; 상당히 강력한 구충제이다[앤쓰엘민틱(anthelmintic)].

(p)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 : 무수프탈산과 페놀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백색이나 황백색 무취의 결정질 가루로 에탄올에 녹는다. 알칼리와 반응하면 진분홍색을 나타내며 용액이 산성화되면 그 빛깔이 없어진다. 시약과 완하제로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요드페놀프탈레인**이 포함되며 이는 가루로서 역시 완하제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i) 프탈레인테트라할리드의 나트륨유도체(**제2918호**)

(ii) 플루오레세인(레조르시놀-프탈레인)(**제3204호**)

(q) **티몰프탈레인(thymolphthalein)** : 백색의 결정체로서 분석 시약과 의약용에 사용한다.

(r) **이소아스코르브산(isoascorbic acid)** : 알갱이 모양의 결정체이다.

아스코르브산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제2936호**).

(s) **탈수소초산(dehydracetic acid)** : 무색의 결정체로서 물에 녹지 않는다.

(t) **암브레톨리드(ambrettolide)** : 무색의 액체로서 머스크 향을 지니고 있으며 향료용으로 사용한다.

(u) **디케텐(diketene)** : 무색 비 흡습성 액체

(v) **3,6-디메틸-1,4-디옥산-2,5-디온(3,6-dimethyl-1,4-dioxane-2,5-dione)**

(C) **그 밖의 산소헤테로 고리화합물(산소 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벤조푸란(benzofuran)**(쿠마론) : 콜타르(coal tar)를 증류한 경유 내에 존재하며 무색의 액체로서 인조플라스틱(쿠마론 수지) 제조 등에 사용한다.

(2) **1,3-디옥소란(1,3-dioxolan)**

(3) **1,4-디옥산(1,4-dioxan)**(디에틸렌 디옥사이드) :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4) **1,3-디옥산(1,3-dioxan)**

(5) **사프롤(safrole)*** : 사사프라스 오일(sassafras oil)에서 얻어지며, 무색에서 황색으로 변하는 액체로서 향료와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용 선구물질(precursor)로서 사용한다(제29류 끝에 있는 선구물질 목록 참조).

(6) **이소사프롤(isosafrole)** : 사프롤(safrole)에서 얻어지고 향료와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과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용 선구물질(precursor)로서 사용한다(제29류 끝에 있는 선구물질의 목록 참조).

(7)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8) **피페로날(piperonal)**(피페로닐알데히드나 헬리오트로핀)($\text{CH}_2\text{O}_2\text{C}_6\text{H}_3\text{CHO}$)* : 백색 결정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 헬리오트로프의 냄새를 갖고 있으며 향료와 리큐르의 향미와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과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용 선구물질(precursor)로서 사용한다(제29류 끝에 있는 선구물질의 목록 참조).

(9) **피페로닐산(piperonylic acid)**

(1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3,4-메틸렌디옥시페닐아세톤)* : 백색에서 황색 빛 크리스탈이며,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과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의 제조에 선구물질(precursor)로 사용한다(제29류 끝에 선구물질의 목록 참조).

(11) **카보퓨란(ISO)** : 이것은 가장 유독한 카르바미산염(carbamate) 살충제 중에 하나이다. 이 물질의 교역은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규제된다.

히드로머쿠리디브로모플루오레세인(hydromercuridibromofluorescein)은 **제2852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의 물질 중 국제기구에서 마약이나 정신신경성 작용 물질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표시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과산화 케톤(**제2909호**)*
- (b) 3원고리 에폭시드(**제2910호**)
- (c)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제2912호**)나 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제2930호**)
- (d) 다염기 카르복시산의 무수물(無水物)과 다가알코올이나 페놀과 다염기산의 환식에스테르(cyclic ester) (**제2917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2932.20호

동일 고리에 락톤기의 산소원자 이외의 부가 헤테로원자(hetero atom)를 함유하고 있는 락톤(lactone) (예: 디락톤)은 락톤에 대한 소호에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부가 헤테로 원자는 분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무수 메틸렌트리스산은 소호 제2932.20호에 분류하지 **않고** 소호 제2932.99호에 분류한다.

만일 에스테르 관능(ester function)이 두 개 이상의 고리 중 일부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 고리 중 하나가 부가 헤테로원자(락톤기의 산소원자 이외의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분자는 락톤(lactone)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소호 제2932.20호에 분류하려면, 락톤(lactone)은 각각의 말단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탄소 원자에 의해 분리되는 서로 다른 락톤기(lactone group)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소호에는 탄소 원자가 분리되어 있고 락톤기에 근접하여 옥소기(oxo group)(>C=O) · 이미노기(imino group)(>C=NH) · 티옥소기(thioxo group)(>C=S)*를 형성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29.33 -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2933.11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 2933.19 -- 기타
-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2933.21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 2933.29 -- 기타
-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2933.31 -- 피리딘과 그 염
- 2933.32 -- 피페리딘과 그 염
-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카펜타닐(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닐(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레미펜타닐(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 2933.34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 2933.35 -- 3-퀴뉴클리디놀
- 2933.36 --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ANPP)
- 2933.37 -- 엔-펜에틸-4-피페리돈(NPP)
- 2933.39 -- 기타
-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933.41 -- 레보파놀(INN)과 그 염
- 2933.49 -- 기타
-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2933.52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 2933.53 --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토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 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 2933.54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 2933.55 --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와론(INN) · 메타와론(INN) · 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 2933.59 -- 기타

-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 멜라민

2933.69 -- 기타

- 락탐

2933.71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2933.72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2933.79 -- 그 밖의 락탐

- 기타

2933.91 --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톤(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2933.92 -- 아진포스-메틸(ISO)

2933.99 -- 기타

이 호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페나존(phenazone)(안티피린 · 디메틸페닐피라조론)*** : 무색 무취의 결정성 가루나 플레이크(flakes) 모양이며 해열제와 항신경통제로서 의약용에 사용한다.

(2) **아미노페나존(aminophenazone)(4-디메틸아미노-2,3-디메틸-1-페닐-5-피라조론)(아미도피린 · 디메틸-아미노아날게신)과 그 염** : 무색 나뭇잎 모양의 결정체로서 아날게신 보다 강한 해열제 · 항신경통제의 성질을 갖는다.

(3) **1-페닐-3-피라조리돈**

(B)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히단토인(hydantoin)과 그 치환유도체***(예: 니트로히단토인 · 메틸히단토인과 페닐히단토인) : 글리콜산과 요소와의 축합으로 얻어진다.

(2) **리시딘(lysidine)** : 흡습성의 백색 결정체로서 ; 요산 용제(溶劑 : solvent)로서 의약용에 사용한다.

(C)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피리딘(pyridine)** : 콜타르(coal tar) · 골유(bone oil)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매우 불쾌한 냄새를 지닌 무색이나 미황색의 액체로서 유기 합성 · 고무공업 · 직물 염염용 · 알코올 변성제 · 의약품 등으로 사용한다.

전 중량의 순도(純度 : purity)가 95% 이상 되는 피리딘(pyridine)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보다 낮은 것은 **제외한다(제2707호)**.

- (2) **피리딘의 유도체**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메틸피리딘(피콜린), 5-에틸-2-메틸피리딘(5-에틸-2-피콜린)과 2-비닐피리딘**

이 호에 분류하려면 이들 유도체의 순도(純度)가 90% 이상 되어야 한다(메틸피리딘의 경우에 모든 메틸피리딘의 이성체는 반드시 합계하여야 한다). 이보다 순도(純度)가 낮은 유도체는 **제외한다(제2707호)**.

- (b) **피리딘카르복시산(pyridine-carboxylic acid)**

피리딘-감마-카르복시산(이소니코틴산)을 포함하며, 무색 결정체로서 감마-피콜린을 산화하거나 합성에 의하여 얻는다. 그것의 히드라지화합물은 결핵 치료제로 사용한다.

니코틴산으로 알려져 있는 피리딘베타카르복시산은 **제외한다(제2936호)**.

- (c) **피리딘베타카르복시산의 디에틸아미드** : 기름 상태의 액체이며, 거의 무색으로서 ; 순환과 호흡 자극용으로 의약품에 사용한다.

- (d) **메소이노시톨헥사니코티네이트(mesoInositol hexanicotinate)**

- (3) **피페리딘(piperidine) 유도체**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1-메틸-4-페닐피페리딘카르복시산**

- (b) **1-메틸-3-페닐피페리딘-3-카르복시산 에틸에스테르**

- (c) **1-메틸-4-페닐피페리딘-4-카르복시산 에틸에스테르(페티딘)**

- (d) **케토메미돈(INN)(1-[4-(메타-히드록시페닐)-1-메틸-4-피페리딜]프로판-1-온)**

- (4) **펜타닐(INN)*** : 진통과 마취의 특성을 가진 페닐피페리딘 합성 오피오이드(phenylpiperidine synthetic opioid)이다. 이것은 또한 마약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다.

- (5) **펜타닐 유도체**는 특히 **알펜타닐(INN), 카펜타닐(INN)과 레미펜타닐(INN)**을 포함한다.

구조 안에 붙지 않은 피페리딘 고리 뿐만 아니라, 푸란 고리나 티오펜 고리와 같이 산소 원자나 황 원자를 가진 그 밖의 헤테로고리를 포함하는 펜타닐 유도체는 **제외한다(제2934호)**.

(D)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퀴놀린(quinoline) · 이소퀴놀린(isoquinoline)과 이들의 유도체 : 피리딘 고리에 벤젠고리가 붙어 이루어진 두 개 고리이다. 퀴놀린(quinoline)과 이소퀴놀린(isoquinoline)은 콜타르(coal tar)에 존재하고, 합성으로도 얻어지며 불쾌한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굴절률이 큰 무색의 액체로서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예: 염료 · 의약품).

이들의 유도체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메틸퀴놀린(methylquinoline)**
- (2) **이소부틸퀴놀린(isobutylquinoline)**
- (3) **이소프로필퀴놀린(isopropylquinoline)**
- (4) **테트라히드로메틸퀴놀린(tetrahydromethylquinoline)***
- (5) **3·4·5·6·7·8- 히드록시퀴놀린과 그 염** : 히드록실기를 퀴놀린 분자의 고리에 도입시켜 얻는다.

이 그룹에는 8- 히드록시퀴놀린의 금속착염(metal complex compound)을 포함한다.

- (6) **페닐퀴놀린 카르복시산(페닐신코닌산)** : 무색 바늘 모양이나 황백색 가루로서 향통풍 · 향류마치스제로 사용한다.
- (7) **옥타페린(INN)(6,7-디메톡시-1-(3,4,5-트리에톡시페닐)이소퀴놀린)**
- (8) **엔-메틸모르피난**
- (9) **3-히드록시-엔-메틸모르피난**

(E)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말로닐우레아(malonylurea)(바르비투르산)와 그 유도체*** : 바르비투르산 유도체는 피리미딘 화합물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들은 수용성의 나트륨염을 형성한다. 알킬(alkyl)로 치환된 바르비투르산 유도체와 그들의 염은 마취제와 진정제로서 의약용에 사용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바르비탈(INN)(디에틸말로닐우레아) · 페노바르비탈(INN)(에틸페닐말로닐우레아) · 아모바르비탈(INN)(에틸이소아밀말로닐우레아) · 세코바르비탈(INN)(알릴-1-메틸부틸말로닐우레아) · 시클로바르비탈(INN)(5-시클로헥스-1-에닐-5-에틸바르비투르산)
- (2) **티오펜톤나트륨(thiopentone sodium)(펜티오바르비탈나트륨)** : 고리식 티오우레이드 화합물로서 황백색 수용성 흡습성 가루로서 불쾌한 냄새를 가지며 마취제로서 의약용에 사용한다.
- (3) **피페라진(piperazine)(디에틸렌디아민)** : 특유의 냄새를 지닌 흡습성의 결정질의 백색 덩어리 모양으로서 통풍치료제로 의약용에 사용한다.
- (4) **2,5-디메틸피페라진(2,5-dimethylpiperazine)** : 무색의 기름같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으로서 요산의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F) **불지 않은 트리아진(triazine) 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멜라민(melamine)**(트리아미노트리아진)* : 광택성이 있는 백색 결정체로서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한다.
- (2)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trimethylenetrinitramine)**(헥소겐) : 폭발성이 있는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충격에 예민하다.
- (3) **시아눌산(cyanuric acid)**(에놀과 케토형)
- (4) **메텐아민(methenamine)**(INN)(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그 염과 유도체 : 백색 등축형의 결정체로서 수용성이 크며 그 용도는 요산의 용제(溶劑: solvent)로서 의약품(요로소독제) · 합성수지 제조 · 고무가황 촉진제 · 발효 방지제 등이다.

이 호에는 의약품의 메텐아민의 정제(pastille and tablet)(제3004호)과 연료용 모양[예: 태블릿(tablet) 모양 ·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한 메텐아민(methenamine)은 **제외한다(제3606호)**.

(G) **락탐(lactam)***

이들 화합물은 락톤(lactone)과 유사한 내부 아미드로 간주하며 물을 제거함으로써 아미노산에서 얻어진다. 분자들은 하나의 고리 안에 한 개 이상의 아미드기를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은 존재하는 아미노기의 수에 따라 모노 · 디 · 트리락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락탐(lactam)의 에놀 호변 이성체인 락티움(lactim)도 포함한다(이들은 케톤의 이성체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6-헥산락탐(6-hexanelactam)** : 백색 결정체로서 ; 물에 용해되며 ; 자극적인 발연체이다. 플라스틱과 인조섬유 제조용에 사용한다.
- (2) **이사틴(isatin)**(이사트산의 락탐) : 광택성 황갈색의 결정체로서 염료 제조용과 의약품에 사용한다.
- (3) **2-히드록시퀴놀린(2-hydroxyquinoline)**(카르보스티릴) : 오르토아미노신남산의 락탐
- (4) **3,3-디(파라아세톡시페닐)옥신돌(디아세틸디히드록시디페닐이사틴)** : 백색 결정질의 가루로서 물에 용해되지 않으며 완하제(laxative)로 사용한다.
- (5) **1-비닐-2-피롤리돈(1-vinyl-2-pyrrolidone)** : 좋은 냄새를 지닌 황색의 결정질 가루로서 폴리(비닐피롤리돈)(제39류)의 제조와 의약품에 사용한다.
- (6) **프리미돈(primidone)**(INN)(5-에틸-5-페닐피히드로피리미딘-4,6-디온) : 백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 (7) **1,5,9-트리아자시클로도데칸(triazacyclododecane)-2,6,10-트리온(trione)**

이 호에는 분자 내 제4암모늄염인 베타인(트리메틸글리신 · 트리메틸글리코콜)은 **포함되지 않는다(제2923호)**.

(H) 그 밖의 질소해테로 고리화합물(질소해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카르바졸(carbazole)과 그 유도체*** : 피롤 핵(pyrrole nucleus)과 두 개의 벤젠고리를 붙여서 유도된 것으로서 콜타르유(coal tar oil)의 중질(heavy) 증류물에 존재하고 합성으로도 얻어진다. 광택성의 결정성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 염료와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한다.

(2) **아크리딘(acridine)과 그 유도체*** : 두 개의 벤젠 고리와 피리딘 고리를 축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콜타르(coal tar)에 소량 존재하며 합성으로 얻는다. 염료와 특정의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아크리딘 유도체**(염료구성물 이외의 것)를 분류한다.

(a) **프로플라빈**(황산 수소3,6-디아미노아크리디늄) : 적갈색의 결정성 가루

(b) **2,5-디아미노-7-에톡시 아크리딘의 젓산염** : 황색의 가루

이들 두 유도체는 방부성과 살균성을 갖고 있다.

(3) **인돌(indol)** : 콜타르(coal tar) 중에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합성으로 얻어지는 작은 결정질의 잎 모양으로서 무색이나 담황색으로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적색으로 변한다. 순수하지 못한 것은 배설물의 냄새가 나며 순수한 것은 꽃 냄새가 강하게 난다. 합성 향료 제조와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4) **베타-메틸인돌(β -methylindole)(스캐틀)** : 플레이크(flake) 모양의 무색 결정체로서 ; 순수하지 못한 것은 배설물의 냄새를 지니고 있다.

(5) **머카프토벤즈이미나졸(mercaptobenziminazole)**

(6) **프탈히드라지드(phthalhydrazide)**(프탈산의 히드라지드)

(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아지리딘)과 그 엔-치환유도체

(8) **포르피린(porphyrin)**(포르핀의 유도체)

(9) **아진포스-메틸(ISO)**(오르토,오르토-디메틸-S-[4-옥소-1,2,3-벤조트리아진-3(4H)-,일]메틸 디티오포스페이트)($C_{10}H_{12}N_3O_3PS_2$).

그러나 포르피린(알칼로이드)(porphyrine)은 **제2939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의 특정 물질로서 국제기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기록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염기산의 이미드화합물은 **제외한다**.

○
○ ○

[소호해설]**소호 제2933.11호 · 제2933.21호와 제2933.54호**

페나존(phenazone)(소호 제2933.11호) · 히단토인(소호 제2933.21호) · 바르비투르 산(소호 제2933.52호)은 복소환식 구조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물질들이다. 이들 물질에 대한 각각의 소호에 분류하는 이들 물질의 유도체는 어미 화합물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미 화합물과 비교할 때 이들 유도체는 일반적으로 ;

- (a) 변성하지 않은 관능기(예: 옥소기)를 가지고 있으며 ;
- (b) 이중 결합의 수와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
- (c) 치환기(예: 페닐기와 페나존의 두 메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 그리고
- (d) 수소원자만이 보다 더 치환되어진다[예: 바르비투르산의 피리미딘 고리 내의 수소원자가 알킬기(基 : alkyl radical)로 치환되어진다].

그러나, 어미 화합물의 에놀형에서 얻은 염은 케토형의 유도체로 간주한다.

소호 제2933.79호

동일 고리에 락탐기의 질소원자 이외의 부가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함유하고 있는 락탐(예: 디락탐)은 락탐에 대한 소호에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부가 헤테로원자는 분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옥사제팜(INN)은 소호 제2933.79호에 분류하지 **않고** 소호 제2933.91호에 분류한다.

만일 아미드 관능이 두 개 이상의 고리 중 일부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 고리 중 하나가 부가 헤테로원자(락탐기의 질소원자 이외의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분자는 락탐(lactam)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소호 제2933.79호에 분류하려면, 락탐(lactam)은 각각의 말단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탄소 원자에 의해 분리되는 서로 다른 락탐기(lactam group)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소호에는 탄소 원자가 분리되어 있고 락탐기에 근접하여 옥소기(oxo group)($>C=O$) · 이미노기(imino group)($>C=NH$) · 티옥소기(thioxo group) ($>C=S$)를 형성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바르비투르산(barbituric acid)은 소호 제2933.79호에서 **제외한다**(소호 제2933.52호)*.

29.34 -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 2934.10 -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2934.2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934.3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 2934.91 --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 2934.92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 2934.99 -- 기타

이 호에는 **핵산(nucleic acid)과 그 염**을 포함한다. 이들은 동식물 세포의 핵에서 발견되는 핵산 단백질 형태(단백질과 결합될 때)의 착화합물이다. 이들은 당과 피리미딘(pyrimidine)이나 퓨린(purine)화합물과 함께 인산의 결합물이다. 일반적으로 백색 가루 상태이며 물에 녹는다.

이 산(acid)이나 흔히 이들 염(예: 핵산나트륨과 핵산구리)은 강장제와 신경계통용 흥분제와 요산용 용제(溶劑 : solvent)로서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thiazole ring)(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티아졸(thiazole)”이라는 용어에는 1,3-티아졸과 1,2-티아졸(이소티아졸)이 모두 포함한다.

(B) 벤조티아졸고리(benzothiazole ring-system)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벤조티아졸(benzothiazole)”이라는 용어에는 1,3-벤조티아졸과 1,2-벤조티아졸(벤지소티아졸)이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머카프토벤조티아졸(mercaptobenzothiazole)** : 황백색 고운 가루 상태로 고무가황 촉진제로 사용한다.
- (2) **디벤조티아조릴디설파이드(dibenzothiazolyl disulphide)** : 고무가황 촉진제로 사용한다.
- (3) **입사피론(ipsapirone)(INN)**(2-[4-(4-피리미딘-2-일피페라진-1-일)부틸]-1,2-벤조티아졸-3(2H)-온 1,1-디옥사이드) : 불안 완화제로 사용한다.
- (4) **디히드로티오-파라-톨루이딘**(4-(6-메틸-1,3-벤조티아졸-2-일)아닐린)

(C) **페노티아진고리(phenothiazine ring-system)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 것을 포함한다.

페노티아진(phenothiazine)(티오디페닐아민) : 광택성의 황색 플레이크(flakes) 모양이나 회녹색의 가루로서 염료 제조 등에 사용한다.

(D) **그 밖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설통(sultone)*** : 이들은 히드록시술포산의 분자내 에스테르로 간주하며 술포프탈레인(sulphonophthaleins)을 포함한다. 예:

(a) **페놀레드(phenol red)(페놀술포프탈레인)*** : 의약용과 분석용 지시약으로 사용한다.

(b) **티몰블루(thymol blue)(티몰술포프탈레인)** : 시약으로 사용한다.

(c) **1,3-프로판설통(1,3-propanesultone)**

(2) **설탐(sultams)*** : 이들은 아미노술포산의 분자내 아미드로 간주한다. 이들은 과산(periacid)으로부터 얻어지고, 나프토설탐-2,4-디술포산이 포함되며 SS산(8-아미노-1-나프톨-5,7-디술포산이나 1-아미노-8-나프톨-2,4-디술포산)의 제조에 사용한다.

(3) **티오펜(thiophen)** : 콜타르와 갈탄타르에 존재하며, 합성으로도 얻어지고, 유동성 무색 액체로서 벤젠과 같은 냄새를 갖는다.

(4) **푸라졸리돈(furazolidone)(INN)(3-(5-니트로푸르푸릴리덴아미노)옥사조리딘-2-온)***

(5) **아데노신 트리-나 피로-인산**

(6) **3-메틸-6,7-메틸렌디옥시-1-(3,4-메틸렌디옥시벤질)-이소퀴놀린히드로클로라이드**

(7) **3-메틸-6,7-메틸렌디옥시-1-(3,4-메틸렌디옥시페닐)이소퀴놀린**

(8) **펜타닐 유도체는 서펜타닐(INN)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백색 분말이다. 이것은 합성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이다.**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한 이들의 유도체는 그 구조 안에 붙지 않은 피페리딘고리 뿐만 아니라, 푸란고리나 티오펜고리와 같이 산소 원자나 황 원자를 가진 그 밖의 헤테로고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질소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를 가진 펜타닐 유도체는 **제외한다(제2933호)**.

이 호에는 **제2852호**에 해당하는 핵산수은(mercury nucleates)과 **제2930호**의 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는 **제외한다**.

*
* *

이 호의 특정물질로서 국제기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로 규정된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기록하고 있다.

29.35 - 술폰아미드*

- 2935.1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2935.20 -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2935.3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2935.4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2935.5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2935.90 - 기타

술폰아미드는 ($R^1SO_2NR^2R^3$)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1 은 이산화황(SO_2) 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 원자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물의 유기기(有機基 : organic radical)이며 R^2 와 R^3 는 수소나 그 밖의 원자이거나 여러 가지 복합물의 무기기(無機基)나 유기기(이중 결합이나 고리를 포함한다)이다. 강한 살세균제로서 의약품에 많이 사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N-알킬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예로서는 N-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나 N-에틸-N-(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를 들 수 있다. 이 화합물들은 분해되어 과불화옥탄 술폰네이트(PFOS)를 형성한다(제 2904 호, 제 2922 호, 제 2923 호, 제 3808 호와 제 3824 호도 참조).
- (2) **오르토틸루엔술폰아미드**
- (3) **오르토틸루엔술폰아미드**
- (4) **파라술폰아미드**
- (5)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드**($H_2NC_6H_4SO_2NH_2$)(술폰닐아미드)*
- (6)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세트아미드**
- (7) **구연산 실테나필(비아그라)**
- (8) **술폰피리딘**(INN)이나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피리딘
- (9) **술폰피리딘**(INN)이나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피리미딘
- (10) **술폰피리딘**(INN)이나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메틸피리미딘
- (11) **술폰티오우레아**(INN)나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티오우레아
- (12) **술폰티아졸**(INN)이나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티아졸
- (13) **술폰아미드의 염화물**(염소원자가 직접 질소와 결합하여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예: “클로라민”으로 알려져 있는 술폰클로라미드나 엔-클로로술폰아미드 ; “클로로티아지드”나 6-클로로-7-술폰모일벤조-1,2,4-티아디아진-1,1-디옥사이드 ; 6-클로로-3,4-디히드로-7-술폰모일벤조-1,2,4-티아디아진 1,1-디옥사이드)

이 호에는 술폰아미드 그룹의 모든 S-N 결합이 고리의 일부분인 화합물을 제외한다. 이들 물질은 **제2934호**의 그 밖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설탐(sultam)]이다.

제11절

프로비타민 · 비타민 · 호르몬

(제2936호 - 제2937호)

총설

이 절에는 상당히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화합물 그룹인 활성 물질을 분류하는데 이들은 동·식물성 유기체가 적당한 기능을 하게 하고 조화로운 발육을 하는데 필수적인 성분들이다.

이들은 생리적 작용을 주로 하며 이들의 특성 때문에 의약과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이 절에서, “유도체(derivative)”란 해당 호 서두의 화합물에서 얻어질 수 있는 화학 화합물로서 기본 화학구조를 포함하여 어미 화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29.36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 --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2936.22 -- 비타민 B₁과 이들의 유도체

2936.23 -- 비타민 B₂와 이들의 유도체

2936.24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₅)과 이들의 유도체

2936.25 -- 비타민 B₆와 이들의 유도체

2936.26 -- 비타민 B₁₂와 이들의 유도체

2936.27 --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2936.28 --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

2936.29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2936.9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비타민은 활성제(active agent)로서 인체와 그 밖의 동물의 조직체가 적당한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체외에서 얻어지며 복잡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다. 비타민은 인체 내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으므로 완성된 형이나 거의 완성된 형(프로비타민)으로 체외에서 섭취된다. 비교적 소량으로 효과가 있으며, 외생적인 생체 촉매로서 간주한다. 비타민의 결핍은 신진대사를 저해하고 나아가서 비타민 결핍증을 일으킨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인지 합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주로 비타민으로서 사용하는 것들의 유도체**
- (b) **천연 비타민들의 농축물**(예: 비타민 A나 비타민 D 등의 농축물) ; 비타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 비타민을 농축한 형태이다. 이들 농축물들은 동물사료 첨가용으로 사용하거나 비타민 유리(遊離 : isolation)용에 사용한다.
- (c) **비타민, 프로비타민이나 농축물의 혼합물** :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비율로 된 천연의 비타민 A나 비타민 D의 농축물로서 비타민A나 비타민D가 추가로 첨가 되어 있다.
- (d) **앞에서 설명한 물품을 용제(溶劑 : solvent)**(예: 올레산에틸 · 프로판-1,2-디올 · 에탄디올 · 식물유)에 희석한 것

이 호의 물품은 보존이나 수송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

-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
-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예: 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 특정한 물질(예: 젤라틴 · 왁스나 지방)로 도포한 것(가소화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 적절한 물질(예: 실리산)에 흡수시킨 것

다만, 앞에서 설명한 첨가량이나 흡수 처리가 이들 물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양(量)이나 흡수 처리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특히 일반 용도보다도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으로 분류하는 물품의 목록

다음의 각 그룹별 제품의 목록은 전부를 나열한 것은 아니며, 다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A) 프로비타민(provitamin)

프로비타민 D

- (1) **비자외선 조사(照射 : non-irradiated)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나 프로비타민 D₂** : 에르고스테롤은 호밀의 맥각균 · 양조용 효모 · 버섯과 그 밖의 균류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비타민 작용을 하지 않는다. 공기 중에서는 황색으로 변하는 백색의 플레이크(flake)로서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알코올과 벤젠에는 녹는다.
- (2) **비자외선 조사(照射)의 7-데히드로콜레스테롤이나 프로비타민 D₃** : 동물의 피부 중에 존재하며 이는 울 그리스(wool grease)나 레시틴(lecithin)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부터 추출된다. 플라테렛(platelet)는 물에 녹지 않으며 유기용제에 녹는다.
- (3) **비자외선 조사(照射)의 22,23-디히드로엘고스테롤이나 프로비타민 D₄**
- (4) **비자외선 조사(照射)의 7-데히드로-베타-시토스테롤이나 프로비타민 D₅**

- (5) 비자외선 조사(照射)의 엘고스테릴 아세테이트
 (6) 비자외선 조사(照射)의 7-데히드로엘고스테릴 아세테이트
 (7) 비자외선 조사(照射)의 22,23-디히드로엘고스테릴 아세테이트

(B)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서 사용하는 것)

비타민 A(성장이나 항결막건조증 비타민)는 신체의 정상 발육 특히 피부·골과 눈의 강막에 중요하다. 이 비타민 A는 상피 계통의 정상적인 감염 저항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식작용과 유즙 분비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들은 지방에 녹으며 일반적으로 물에는 녹지 않는다.

- (1) **비타민 A₁ 알코올**(악세로프톨·레티놀(INN))

비타민 A₁ 알데히드(레티넨-1·레티날)

비타민 A₁산(트레티노인(INN)·레티노산)

비타민 A₁은 동물성 물품(해수어·낙농품·알) 중에 알코올이나 지방산 에스테르(ester)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주로 신선한 어간유(魚肝油 : fish liver oil)에서 추출되며 또한 합성에 의해서도 얻어진다. 이는 실온(室溫)에서 기름 상태를 유지하는 황색의 고체이며 냉각하면 황색의 결정체로 된다. 공기 속에서는 불안정하므로 산화 방지제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킬 때가 있다.

- (2) **비타민 A₂ 알코올**(3-데히드로악세로프톨,3-데히드로레티놀)

비타민 A₂ 알데히드(레티넨-2,3-데히드로레티날)

비타민 A₂는 비타민 A₁처럼 천연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는 않으나 담수어에서 추출되며 비타민 A₂ 알코올은 결정화하지 않으나 비타민 A₂ 알데히드는 오렌지색의 결정체로 얻어진다.

- (3) **초산·팔미트산 비타민 A와 그 밖의 지방산 에스테르(ester)** : 이들은 합성비타민 A로부터 얻어지며 ; 산화에 민감하며 아세트산비타민 A는 황색의 가루이며 팔미트산 비타민 A는 황색의 액체로서 순수 상태에서 결정화 될 수 있다.

(C) 비타민 B₁과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B₁은 신경염 방지용 비타민이며 각기병 예방에 중요한 물질이며 탄수화물의 신진대사에 중요하다. 여러 가지의 다발성 신경염·위장장애의 치료와 적당한 식욕을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이 비타민은 물에 녹으며, 열에 매우 불안정하다.

- (1) **비타민 B₁**[티아민(INN)·애뉴린] : 티아민(thiamine)은 많은 동식물(예: 곡물의 외피·양조용 효모·돈육·간(liver)·낙농품·알 등)의 조직 중에 존재하며 ; 일반적으로 합성에 의하여 제조되고 백색의 결정질 가루로서 공기 속에서는 안정하다.
 (2) **염산티아민(thiamine hydrochloride)** : 백색의 결정질 가루로서 흡습성이며 매우 불안정하다.
 (3) **모노질산티아민(thiamine mononitrate)** : 백색의 결정질 가루로서 상당히 안정하다.
 (4) **티아민-1,5-염(thiamin-1,5-salt)**(애뉴린-1,5-염,애뉴린 나프탈렌-1,5-디술포산염)

- (5) **염산살리실산티아민(thiamine salicylate hydrochloride)**(염산살리실산에뉴린)
- (6) **염소브롬화살리실산티아민(thiamine salicylate hydrobromide)**(염소브롬화살리실산에뉴린)
- (7) **요도티아민(iodothiamine)**
- (8) **염산요도티아민(iodothiamine hydrochloride)**
- (9) **요드화수소요도티아민(iodothiamine hydriodide)**
- (10) **비타민 B₁의 오르토인산에스테르(orthophosphoric ester)나 오르토인산티아민과 이 에스테르의 모노-, 디-염산과 모노인산염**
- (11) **비타민 B₁의 니코틴산에스테르(nicotinic ester)**

(D) 비타민 B₂와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B₂는 영양제와 성장촉진 비타민이며 ; 탄수화물용 이용인자(utilisation factor)로서 생리적으로 중요하며 물에 녹으며 열에 안정하다.

- (1) **비타민 B₂[리보플라빈(INN)·락토플라빈]** : 여러 가지의 생산품과 식료품 중에 비타민B₁과 결합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증류와 발효 잔유물과 소의 간(beef liver)으로부터 추출되며 합성에 의해서도 얻는다. 오렌지노란색 결정으로서 빛에 상당히 민감하다.
- (2) **리보플라빈 5'-오르토인산에스테르나 5'-오르토인산리보플라빈과 그 나트륨이나 디에탄올아민염** : 리보플라빈보다 물에 잘 녹는다.
- (3) **(히드록시메틸)리보플라빈이나 메틸올리보플라빈**

(E) D-나 DL-판토텐산(비타민 B₅로 알려져 있다)과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이들 화합물은 머리카락회색방지·피부발육과 지방과 탄수화물의 신진대사작용을 한다. 선(gland)·간(liver)·위장·호흡기의 활동에 필수적이며, 물에 녹는다.

- (1) **D-나 DL-판토텐산[엔-(알파·감마-디히드록시-베타·베타-디메틸부티릴)-베타-알라닌]** : 이 비타민은 비타민 B₅로 알려져 있고, 생물의 세포와 조직(예: 포유동물의 간·콩팥·배아·효모·밀크·조당밀 등) 중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합성에 의하여 얻어진다. 황색 점성의 기름 상태로서 ; 물과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서서히 녹는다.
- (2) **D-와 DL-판토텐산 나트륨**
- (3) **D-와 DL-판토텐산 칼슘** : 비타민 B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백색 가루로 물에 녹는다.
- (4) **판토텐닐 알코올(pantotheryl alcohol)이나 판토텐놀(D-와 DL-)(알파,감마-디히드록시-엔-3-히드록시프로필-베타,베타-디메틸 부티르아미드)** : 점성질의 액체로서 물에 녹는다.

- (5) **디-판토텐놀에틸에테르(D-pantothenol ethyl ether)**(디-알파,감마-디히드록시-엔-3-에톡시프로필-베타, 베타-디메틸부티르아미드) : 점성질의 액체로서 물과의 혼합이 용이하고 유기용제에 쉽게 녹는다.

(F) 비타민B₆과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B₆은 항피부염성 비타민(피부보호)이다. 이것은 신경계 · 영양과 아미노산 · 단백질과 지방질의 신진대사 작용에 대한 역할을 한다. 임신 또는 수술 후 상태에 따른 구토 등에 사용한다. 물에 녹고 빛에 상당히 민감하다.

- (1) **피리독신(pyridoxine)(INN)이나 아테르민(피리독솔)**(3-히드록시-4,5비스(히드록시메틸)-2-메틸피리딘)

피리독살(4-포르밀-3-히드록시-5-히드록시메틸-2-메틸피리딘)

피리독사민(4-아미노메틸-3-히드록시-5-히드록시메틸-2-메틸피리딘)

이들 비타민 B₆의 세 가지의 형태는 양조용 효모 · 사탕수수 · 곡물의 외피 · 쌀겨 · 밀 배아유(wheat germ oil) · 아마인유 · 포유동물과 어류의 간(liver) · 육(meat)과 지방에 함유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합성으로 제조되고 있다.

- (2) **염산피리독신(pyridoxine hydrochloride)**

오르토인산피리독신

피리독신트리팔미트에스테르

염산피리독살

이염산피리독사민

인산피리독사민

이들은 비타민 B₆의 정상적인 모양이며 무색의 결정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다.

- (3) **피리독신오르토인산에스테르(pyridoxine orthophosphoric ester)와 그 나트륨염**

피리독살오르토인산에스테르와 그 나트륨염

피리독사민오르토인산에스테르와 그 나트륨염

(G) 비타민 B₉와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B₉는 혈액세포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악성빈혈 치료에 유효하다. 시금치 · 녹색 식물 · 양조용 효모 · 동물의 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합성에 의하여 제조된다.

- (1) **비타민 B₉(폴릭산(INN)이나 테로일글루탐산)와 그 나트륨염과 칼슘염**

(2) 폴린산(INNM)(5-포르밀-5,6,7,8-테트라히드로테로일글루탐산)

(H) 비타민 B₁₂[시아노코발아민(INN)와 그 밖의 코발아민(히드록소코발아민 · 메틸코발아민 · 니트로코발아민 · 술포토코발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비타민 B₁₂는 악성빈혈 치료에 있어서 비타민 B₉보다 더욱 효과가 있다. 분자량이 크고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으며 포유동물과 어류의 간(liver) · 육(肉) · 알(卵) · 밀크 등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항생물질 배양폐액(spent antibiotic liquor) · 사탕무 당밀(糖蜜 : molasses) · 유장(乳漿 : whey) 등에서 얻어지며 암적색의 결정체로서 물에 녹는다.

(I)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C는 항괴혈병 비타민으로서 감염에 저항력을 증가시키며 물에 녹는다.

- (1) **비타민 C(L-이나 DL-아스코르브산(INN))** :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은 많은 식물성 식품(과실 · 녹색채소 · 감자 등)이나 동물성 물품(간 · 비장 · 부신 · 뇌 · 밀크 등) 중에 함유되어 있으며 ; 레몬주스 · 풋고추와 고추 · 파란 아니시드 잎 · 용설란(agave) 섬유유 처리 잔류액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합성에 의하여 제조한다. 백색의 결정질 가루로서 건조한 공기 중에서 상당히 안정하며 강한 환원제로서 작용한다.
- (2)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 (3) **아스코르브산 칼슘과 아스코르브산 마그네슘**
- (4) **스트론튬(엘)아스코르보신코니네이트**(스트론튬(엘)아스코르보-2-페닐퀴놀린-4-카르복실레이트)
- (5) **아스코르브산 사르코신**
- (6) **아스코르브산 엘-알기닌**
- (7) **팔미트산아스코빌(Ascorbyl palmitate)** : 비타민C의 지방에 녹는 형상으로서 지방과 기름의 유화제와 산화방지제로 사용한다.
- (8) **하이포린산아스코르브산칼슘**
- (9) **아스코르보글루탐산나트륨**
- (10) **아스코르보글루탐산칼슘**

(K)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D는 항구루병 비타민이다. 동식물 중 인산과 칼슘의 이용을 조정하고 이빨과 뼈의 발육을 돕고 ; 지방에 녹는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동식물 중에서 생성과 변환되는 스테롤이나 스테롤 유도체인 프로비타민 D를 자외선 조사(照射 : irradiation)나 활성화하여 얻는다.

(1) **비타민 D₂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들의 유도체**

(a) **비타민 D₂와 활성화나 자외선 조사(照射 : irradiation)된 엘고스테롤(ergosterol)**
[칼시페롤(calciferol) · 엘고칼시페롤(ergocalciferol)] : 백색의 결정질 가루로서 공기 · 빛
이나 열에 노출되면 황색으로 변하며 ; 물에 녹지 않으며, 지방에 녹는다. 코코아두와 어류의
간(肝)에 함유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프로비타민 D₂를 활성화나 자외선 조사(照射
: irradiation)하여 제조된다.

(b) **비타민 D₂의 초산과 그 밖의 지방산 에스테르(ester)**

(2) **비타민 D₃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의 유도체**

(a) **비타민 D₃과 활성화되거나 자외선 조사된 7-데히드로콜레스테롤(콜레칼시페롤)** : 백색의
결정질 가루로서 공기 속에서는 서서히 변질되며 ; 물에 녹지 않으며, 지방에 녹는다.
어유(魚油)나 어간유(魚肝油)로부터 추출되며 일반적으로는 프로비타민 D₃을 활성이나
자외선 조사(照射 : irradiation)하여 제조되며 비타민 D₂보다 활성이 더 강하다.

(b) **활성화되거나 자외선 조사(照射 : irradiation)된 초산-7-데히드로콜레스테릴과 그 밖의
비타민 D₃의 지방산 에스테르(ester)**

(c) **비타민 D₃-콜레스테롤 분자화합물**

(3) **비타민 D₄와 활성화되거나 자외선 조사(照射 : irradiation)된 22, 23-디히드로엘고스테롤** :
백색의 플레이크(flake)로서 비타민 D₂보다 생물적인 활성이 낮다.

(4) **비타민 D₅와 활성화되거나 자외선 조사(照射 : irradiation)된 7-데히드로-베타-시토스테롤**

(L)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E는 항불임성 비타민으로서 신경과 근육계에 중요하며 지방에 녹는다.

(1) **비타민 E나 (D-와 DL-)-알파토코페롤, 베타토코페롤과 감마토코페롤** : 토코페롤
(tocopherol)은 여러 가지의 동식물(예: 코코아두 · 목면의 종자 · 식물유 · 콩과의 잎 · 사라다
잎 · 자주개자리 · 낙농품 등) 생산품 중에 존재하며 주로 밀 배아유(wheat germ oil)에서 추출
된다. 또한 라세미체(racemic isomers)는 합성에 의하여 얻는다. 무색의 기름(油 : oil) 상태
로서 물에 녹지 않으며 알코올 · 벤젠과 지방에 녹으며 ; 산소와 빛이 없는 곳에서는 열에
안정하다. 또한 이의 산화방지성으로 인해 지방과 식품에서 산화 억제제로 사용하는데 적합
하다.

(2) **초산알파토코페릴 · 숙신산수소에이토코페릴 · 숙신산폴리에틸렌글리콜 알파토코페릴
(숙신산폴리에틸렌 글리콜 알파토코페릴으로도 알려져 있다).**

(3) **인산이나트륨 알파토코페릴**

(4) **디아미노초산토코페릴**

(M)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H는 특정의 미생물 증식에 필요하며 피부 · 근육과 신경계통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것이다. 물에 녹고 열에는 안정하다.

(1) **비타민 H·비오틴(biotin)** : 비오틴은 알의 노른자위(난황)·콩팥·간·밀크·양조용 효모·당밀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합성으로 제조된다.

(2) **비오틴메틸에스테르(biotin methyl ester)**

(N)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

비타민 K는 항출혈 인자로서 혈액속의 응혈소의 함량을 유지하고 모세관 저항을 증진시켜 혈액 응고를 촉진한다.

(1) **비타민 K₁**

(a) **피토크나디온(INN)·필로퀴논·피토나디온·3-피틸메나디온(2-메틸-3-피틸-1,4-나프토크논)**. 건조 자주개자리로부터 추출하며 ; 개암나무의 잎·밤의 잎·보리의 새싹·귀리의 새싹·꽃양배추·양배추·시금치·토마토·식물유 등에 존재하며 또한 합성으로 얻어진다. 밝은 황색의 기름으로서 지방에 녹으며 ; 열에는 안정하나 햇빛에는 불안정하다.

(b) **산화비타민 K₁(에폭시드)** (2-메틸-3-피틸-1,4-나프토크논-2,3-옥사이드나 2-메틸-3-피틸-2,3-에폭시-2,3-디히드로-1,4-나프토크논)

(c) **디히드로필로퀴논**(3-디히드로피틸-2-메틸-1,4-나프토크논)

(2) **비타민 K₂ 나 파르노퀴논**(3-디파르네실-2-메틸-1,4-나프토크논). 부패한 정어리육으로부터 추출되며 비타민 K₁보다는 활성이 약하다. 황색의 결정체로서 빛에는 매우 불안정하다.

(O) 비타민 PP(니코틴산이나 니코틴아미드, 또는 비타민B₃라고도 한다)와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되는 이들의 유도체

비타민 PP는 항펠라그라(anti-pellagra) 비타민으로서 성장·산화·세포호흡·단백질과 탄수화물 신진대사 작용에 필수적인 것이다.

(1) **니코틴산(INN)(베타카르복시산피리딘·니아신)** : 동물계(예: 포유동물의 간·콩팥·신선육과 특정의 어류)와 식물계[양조용 효모·곡물의 씨눈(germ)과 과일껍질(果皮 : pericarp) 등]. 합성으로 제조되며 무색의 결정체로서 알코올에 녹으며 지방에 녹으며 ; 비교적 열과 산화에 안정하다.

(2) **니코틴산 나트륨(sodium nicotinate)**

(3) **니코틴산 칼슘(calcium nicotinate)**

(4) **니코틴 아미드(nicotinamide)(INN)(니코틴산아미드·니아신아미드)** : 근원·성질과 용도는 니코틴산과 같으며, 합성으로 얻어지고 물에 녹으며 열에 안정하다.

(5) **염산니코틴아미드(nicotinamide hydrochloride)**

(6) **니코티노모르폴리드(nicotinomorpholide)**

제외규정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다음에 열거한 물품은 간혹 비타민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비타민 작용을 하지 않으며, 비타민 작용을 하더라도 그 밖의 용도와 관련하여 볼 때 비타민의 작용은 제2차적이다.
 - (a) 메소이노시톨·묘이노시톨·아이이노시톨이나 메소이노사이트(**제2906호**)는 위장과 간장 장애에 사용한다(특히, 핵사인산칼슘이나 마그네슘).
 - (b) 비타민 H₁ : 프라이미노 벤조산(**제2922호**)(성장촉진과 일부의 술폰아미드의 항세균 발육 억제 작용을 중화한다)
 - (c) 콜린(choline)이나 비리네우린(**제2923호**) : 지방의 신진대사를 안정화한다.
 - (d) 비타민 B₄ : 아테닌이나 6-아미노퓨린(**제2933호**)(이는 혈액병 후 회복과 중앙치료에 사용한다)
 - (e) 비타민 C₂ 나 P : 씨트린·헤스페리딘·루토시드(루틴)·에스쿨린(**제2938호**)(지혈인자로서나 모세혈관 저항성 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
 - (f) 비타민 F : 리놀레(linoleic)나 리놀산(linolic acid)(알파와 베타)·리놀렌산·아라키돈산(**제3823호**)(이는 피부염과 간장 장애치료에 사용한다)
- (2) 비타민의 합성대용물
 - (a) 비타민 K₃ : 메나디온·메나프톤·메틸나프톤·2-메틸-1,4-나프토퀴논 ; 2-메틸-1,4-나프토퀴논 비술파이트 유도체의 나트륨 염(**제2914호**) ; 메나디올·1,4-디히드록시-2-메틸나프탈렌(**제2907호**)
 - (b) 비타민 K₆ : 1,4-디아미노-2-메틸 나프탈렌(**제2921호**)
 - (c) 비타민 K₅ : 염산4-아미노-2-메틸-1-나프톨(**제2922호**)
 - (d) 시스테인 : 비타민 B 대용물(**제2930호**)
 - (e) 프티오클 : 2-히드록시-3-메틸-1,4-나프토퀴논(비타민 K 대용물)(**제2941호**)
- (3) 엘고스테롤 이외의 스테롤 : 콜레스테롤·시토스테롤·스티그마스테롤과 비타민 D₂를 제조할 때 얻어지는 스테롤(타키스테롤·루미스테롤·톡시스테롤·수프라스테롤)(**제2906호**)
- (4) **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되는 의약품
- (5) 크산토펜(xanthophyll) : 천연의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제3203호**)
- (6) 프로비타민 A[알파(α)·베타(β)와 감마(γ)-카로틴과 크립토크산틴](착색물질로 사용한다)(**제3203호**와 **제3204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2936.90호

이 소호는 특히 둘 이상의 비타민 유도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화학적 합성 즉, 미리 결정된 비율에 의한 디-판토티온·아미노-3-프로파놀-1 와 3-에톡시프로필라민의 반응에 의하여 얻어진 디-판토티놀에틸 에테르(ether)와 텍스판테놀의 혼합물은 소호 제2936.90호의 “그 밖의 것(Others)”로 분류하여야 하며, D-나 DL-판토티논의 혼합되지 않은 유도체(소호 제2936.24호)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29.37 -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2 -- 인슐린과 그 염

2937.19 -- 기타

-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히드로 히드로코르티손)

2937.2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2937.23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2937.29 -- 기타

2937.50 -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

(I) **천연 호르몬** : 사람이나 동물의 살아있는 조직에서 생성되는 활성 물질로서 극히 소량으로 특정 기관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자극한다. 기관에 직접 작용하거나 합성을 조절하고 2차 혹은 3차 호르몬계의 분비에 관여한다. 호르몬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특징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테레오 분자 수용체(stereospecific molecular receptor)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 물질의 분비는 보통 내분비선에 의하여 교감계와 부교감계에 의해 지배된다. 호르몬은 사람이나 동물체내의 혈액, 임파액이나 그 밖의 액체에 의해 운반된다. 호르몬은 내분비선과 외분비선(exocrinal)이나 여러 세포조직 중에서 생성된다. 혈액을 통한 운반이 호르몬의 반응을 위해 필수적인 것만은 아니다. 반응은 호르몬을 방출시킨 세포 안의 수용체[측분비(側分泌 : paracrine) 조절]나 세포 위의 수용체(자가분비 조절)와 결합하여 호르몬을 간질액 안으로 방출시켰을 때도 나타난다.

(II) **천연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 트롬복산(thromboxane)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 : 신체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국소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은 호르몬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서 피부 조직에 의해서 합성되며, 특정한 세포 수용체를 결합시키는 역할(국소의 세포환경에서 작용한다)과 여러 가지의 조직에서 세포활동의 조절제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세 종류의 화학적 물질들(아라키돈산의 유도체)은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hormone-like action)”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II) **합성(생물공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에 의해 재생되는 천연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 트롬복산(thromboxane)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 : 이것은 천연물질과 같은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다.

(IV) **천연이나 합성호르몬의 유도체,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thromboxane)과 류코트리엔** [예를 들어 염 · 할로겐화 유도체 · 고리식 아세탈 · 에스테르(ester) 등]과 **혼합유도체**[할로겐화 유도체의 에스테르(ester)] (주로 호르몬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V)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의 유사체** : 유사체(analogue)라는 말은 모체 합성물과 유사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 화학물질을 말하지만 유도체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천연 합성물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는 합성물들을 포함하지만 다른 물질들에 의해 대체된 구조 안에는 하나나 그 이상의 원자를 가진다.

(a) 폴리펩티드(polypeptide)의 호르몬의 유사체는 천연 폴리펩티드(polypeptide) 고리 안에서 첨가·분리·대체와 특정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다. 성장 호르몬 소마토트로핀의 유사체인 **소마트렘(somatrem)**(INN)은 아미노산 말단을 천연 소마토트로핀 분자에 첨가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천연 아르기프레신(INN)과 리프레신(INN)의 유사체인 **오르니프레신(ornipressin)**(INN)은 아르기프레신과 리프레신 분자에서 내부 아미노산을 대체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고나도레린(gonadorelin)(INN)의 유사체들인 합성 고나돌리버린·**부세레린(buserelin)**(INN)·**나파레린(nafarelin)**(INN)·**페틸레린(fertirelin)**(INN)·**류프로레린(leuprorelin)**(INN)과 **루트레린(lutrelin)**(INN)은 특정한 아미노산들을 천연 **고나도레린(gonadorelin)**의 폴리펩티드(polypeptide) 고리에서 변화 시키거나 대체한 결과물이다. 코르티코르도핀(INN)의 유사체인 **기랙티드(giractide)**(INN)는 천연 코르티코르도핀의 최초 18개의 아미노산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렙틴(leptin)의 유사체인 **메트레렙틴(metreleptin)**(INN)은 인간 렙틴의 재조합 메티오닐 유도체이다. 안지오텐신II의 분자와 비교해서 세 가지 다른 아미노산을 함유한 **사랄라신(saralasin)**(INN)은 안타고니스트 효과(antagonist effect)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지오텐신II의 구조적 유사체로 간주하여야 한다[전자는 강압제(hypotensor)이며 후자는 승압제(hypertensor)이다].

(b)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유사체는 링 축소나 확장에 의해 혹은 링 안에서 특정한 원자들을 다른 물질들(탄소 이외의 원자)로 교체함으로써 변형될 수 있는 고난 구조(gonane structur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모프레이트(domoprednate)**(INN)와 **옥산드로론(oxandrolone)**(INN)은 이런 종류의 유사체의 두 가지 예이다. 앞서 말한 고난(gonane)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유사체와 유도체들의 족들은 호르몬 억제제와 길항제로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물질들을 포함한다. 예로 향안드로젠인 **시프로테론(cyproterone)**(INN)·향고나도트로핀인 **다나졸(danazol)**(INN)·프로게스테론 생산을 억제하는 에포스탄(epostane)(INN)이 있다.

(c) 프로스타글란딘의 유사체·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들은 고리에서 원자의 치환이나 링의 형성과 제거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틸수프로스트(tilsuprost)**(INN)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산소와 탄소 원자는 질소와 황 원자로 치환되고 하나의 링은 닫히게 된다.

(VI) **호르몬의 천연 혼합물**·호르몬 유도체나 호르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스테로이드의 천연 혼합물(가령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결합 에스트로겐의 천연 혼합물)도 포함되나 인위적인 혼합물이나 조제물은 배제된다(일반적으로 **제3003호나 3004호**).

호르몬 방출인자(호르몬 자극인자), 호르몬 억제제와 항호르몬제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8호를 참조). 이 호에는 호르몬의 유도체 혹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들도 포함한다. 다만 이 같은 호르몬은 천연 호르몬·합성 호르몬에 기본 재료를 두며 호르몬과 비슷한 체계를 이용해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화학구조에 따라 열거한 품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 목록은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열거한 것은 아니다.



제2937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분류하는 품목표*

(*) 명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표한 의약품질에 대한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또는 의약품질에 대한 국제일반명(개정)[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Modified)]인 경우 그 명칭을 먼저 기재하고 각각 (INN) 또는 (INN(M))을 표시하였음.

(A)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 호르몬 · 단백질 호르몬과 글리코프로테인(glycoprotein) 호르몬과 그 유도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성장호르몬 · 이들의 유도체와 구조적인 유사체 : 성장 호르몬**[성장 호르몬, GH, STH (성장호르몬)] : 조직체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리고 단백질 신진대사의 다른 반응들의 조절과 관련이 있는 물에 녹는 단백질 · 뇌하수체 전엽의 성장세포에 의해 분비된다. 분비는 분비요소(성장호르몬-분비호르몬)와 억제 요소인 소마토스타틴(성장억제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성장호르몬(hGH)은 191개의 아미노산 중 대부분 유전자 재조합 DNA기술에 의해서만 만든 단 하나의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 고리이다. 이 부분은 또한 유도체와 **소마트렘(somatrem)(INN)**(메티오닐 hGH) · **아세틸화 hGH** · **탈아미노 hGH**와 **소메노포르(somenopor)(INN)**와 같은 유사체와 페그비소먼트(pegvisomant)(INN)와 같은 호르몬 방지제(hormone antagonist)를 포함한다.
- (2) **인슐린(insulin)과 그 염(salt)** : 인슐린은 51개의 아미노산 그룹을 함유하는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이며 많은 동물들 췌장의 랑게르한스섬(islet of Langerhans)에서 만들어진다. 인간의 인슐린은 재조합된 인간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췌장에서 추출하거나 소나 돼지의 인슐린을 변형함으로써 혹은 박테리아나 효모와 관련된 생물공학적인 과정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인슐린은 순환하는 포도당과 그 밖의 영양소를 글리코젠과 지방 형태로 저장할 뿐만 아니라 세포질의 그 섭취에 있어 하나의 요소이다. 순수 인슐린은 흰색의 흡습성이 없는 비 결정질의 가루 혹은 수용성의 광택이 있는 결정체이다. 이것은 당뇨병 치료에 쓰인다. 인슐린염은 염산 인슐린을 포함한다.
- (3) **부신피질자극호르몬(corticotropin)(INN)**[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픽 호르몬(ACTH : adreno corticotropic hormone) · 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핀] : 물에 녹는 폴리 펩타이드로서 아드레노코르티칼 스테로이드의 생성을 자극한다. **지랙티드(Giractide)(INN)**도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유사물질이다.
- (4) **유즙분비호르몬(lactogenic hormone : LTH** · 갈락틴 · 갈락토진 호르몬 · 루테오토로핀 · 마모트로핀 · 프로락틴) : 결정성의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서 유즙분비(乳汁分泌 : milk secretion)작용을 촉진하고 항체(*corpus luteum*)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 (5)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trophin)(INN)**(티로트로픽 호르몬 · TSH : thyroid-stimulating hormone) : 혈액 중의 갑상선 작용과 요오드의 이동에 개재하는 당단백질(glycoprotein)이다. 성장과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
- (6) **난포자극호르몬(follicle-stimulating hormone : FSH)** : 당단백질으로서 물에 녹으며 성기능을 자극시킨다.
- (7) **황체형성호르몬[luteinising hormone : LH** · (조직 사이의 세포자극 호르몬)(ICSH : interstitial-cell-stimulating hormone), 루테인노스티물린] : 수용성글리코프로테인 · 스테로이드 분비와 배란과 조직 사이의 세포형성을 촉진하면서 성기능을 자극한다.
- (8) **융모막(chorionic) 고나도트로핀(INN)**(hCG : 사람 융모성 성선 자극호르몬) : 태반 중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glycoprotein)으로서 임신부의 소변에서 추출된다. 백색 결정체로서 그 수용액은 불안정하며 난포의 성숙을 자극시킨다.
- (9) **혈청고나도트로핀(INN)**(eCG : 말의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 생식선 자극작용을 하는 당단백질(glycoprotein)으로서 임신한 말의 태반과 자궁내막에서 생성된다. 본래 임신한 말의 혈청고나도트로핀으로 불린다.

- (10) **옥시토신(oxytocin)**(INN)[알파(α)-히포파민] :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서 물에 녹으며 주로 자궁 수축과 유선의 유분출 작용을 한다. 또한 **카르베토신(carbetocin)**(INN) · **데목시토신(demoxytocin)**(INN) 등의 유사 물질도 포함한다.
- (11) **혈관수축호르몬(vasopressin)** : 아르기프레신(INN)과 리프레신(INN) · 그 유도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 · 혈관수축호르몬은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서 혈압상승작용과 콩팥의 보수력 증가작용을 한다. 또한 **테르리프레신(terlipressin)**(INN) · **데스모프레신(desmopressin)**(INN)과 같은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 유사물질도 포함한다.
- (12) **칼시토닌(calcitonin)**(INN)(TCA : 티로칼시토닌) :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서 혈액 중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
- (13) **글루카곤(glucagon)**(INN)(HGF : 하이퍼글리세믹-글리코게노리틱 인자) : 폴리펩타이드로서 혈액 중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
- (14) **티롤리베린(thyroliberin)**(TRF · TRH) : 폴리펩타이드로서 티로트로핀(thyrotropin)의 분비를 자극시킨다.
- (15) **고나도렐린(gonadorelin)**(INN)(고나도릴베린 · 고나도트로핀 자극호르몬 · LRF · GnRH) : 폴리펩타이드로서 뇌하수전에서 난포와 황체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또한 폴리펩타이드 유사물질 **부세릴린(buserilin)**(INN) · **고세릴린(goserilin)**(INN) · **페르티렐린(fertirelin)**(INN) · **세르모렐린(sermorelin)**(INN) 등도 포함한다.
- (16)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INN)(SS · SRIH · SRIF) : 폴리펩타이드로서 뇌하수선으로부터 성장호르몬과 TSH의 방출을 억제하며 신경친화작용을 한다.
- (17) **심방성 나트륨이뇨 호르몬(atrial natriuretic hormone : ANH · ANF)** : 심장의 심방에서부터 분비되는 폴리펩티드 호르몬이다.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여 심장의 심방이 확장될 때 ANH가 분비되도록 자극된다. 그 다음 ANH는 소금과 물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감소시킨다.
- (18) **엔도텔린(endothelin)** : 맥관 구조 전체에 퍼져 있는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폴리펩티드 호르몬이다. 엔도텔린이 순환되는 혈액으로 방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측분비(側分泌 : paracrine) 경향에 의해 인접한 혈관의 평활근을 수축하도록 그리고 혈압을 증가 시키도록 국부적으로 활동한다.
- (19) **인히빈(inhibin)**과 **액티빈(activin)** : 생식선(gonadal) 조직에서 발견되는 호르몬이다.
- (20) **렙틴(leptin)** : 폴리펩타이드 호르몬으로서 뇌의 수용체에서 신체 중량과 지방 침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지방 조직에 의해 생산된다. 또한 여기에는 렙틴의 재조합 메티오닐 유도체인 **메트레렙틴(metreleptin)**(INN)이 포함되는데, 이는 렙틴의 유사체로 간주하며 렙틴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

(B) 스테로이드 호르몬 · 그 유도체와 구조적 유사체

(1)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 : 부신피질의 외피에서 분비되어 인체의 신진대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부신피질 호르몬과 코르티코이드라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들의 생리적 작용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즉 (i)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대사 작용을 조절하는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과 (ii) 인체의 나트륨과 물을 유지하고 칼륨의 배설 촉진하는 전해질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다. 전해질 부신피질 호르몬의 특징은 에디슨병이나 콩팥 결핍의 치료에 이용된다. 이들은 아래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 유도체와 유사체들을 포함한다.

- (a) **코르티손(cortisone)(INN)***: 단백질과 탄수화물 대사 작용을 조절하고 또한 국부적인 소염작용을 하는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
- (b)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INN)(코르티졸)*** : 코르티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
- (c) **프레드니손(prednisone)(INN)(탈히드로코르티손)** :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 · 코르티손의 유도체
- (d)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INN)(탈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 · 히드로코르티손의 유도체
- (e) **알도스테론(aldosterone)(INN)** : 전해질 부신피질 호르몬
- (f) **코르토독손(cortodoxone)(INN)**

몇몇 유도체는 이들의 항염 작용에 도움이 되도록 이들의 피지 호르몬 영향을 억제시키기 위해 변형되며 그것은 호르몬 작용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코르티손(cortisone)(INN) ·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INN) · 프레드니손(prednisone)(INN)과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INN)의 유도체들이다. 이것들은 항염과 항류머티즘제로 사용한다.

(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 일반적으로 고난 링(gonane ring)의 6 이나 9 위치에서 수소원자는 염소나 불소 원자[예를 들면, **덱사메타손(dexamethasone)(INN)**]에 의해서 대체되고 당질 부신피질호르몬(코르티코이드)과 이것들에서 유도된 코르티코이드의 소염작용을 크게 높이는 스테로이드이다. 이 유도체들은 에스테르와 아세토나이드[예를 들면,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flucinolone acetonide)(INN)**] 등의 형태로 종종 더 변형되어 판매된다.

(3) **에스트로겐(oestrogen)과 프로게스토겐(progestogen)** : 이들은 남성과 여성 생식기들에 의해서 분비되는 성 호르몬들 중의 주요한 두 그룹이다. 이것들은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호르몬은 프로게스틴과 게스타겐으로 불린다.

에스트로겐(oestrogen) : 난소 · 고환 · 부신 · 태반 그리고 다른 스테로이드를 생성하는 조직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여성 호르몬이다. 그것은 암컷 포유동물에서 발정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성들이 발현되게 하고 폐경기 치료제나 피임약의 조직표본으로 사용한다. 이것들은 아래의 에스트로겐 · 유도체 그리고 유사체를 포함한다.

- (a) **에스트론(estrone)(INN)** : 인간의 주요한 에스트로겐
- (b) **에스트라디올(estradiol)(INN)** : 중요한 천연 에스트로겐
- (c) **에스트리올(estriol)(INN)** : 자연 에스트로겐
- (d) **에티닐 에스트라디올(ethinyl estradiol)(INN)** : 입을 통해서 활동성이 있고 조합 구강 피임약에서 주요 에스트로겐 성분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합성 에스트로겐
- (e) **메스트라놀(mestranol)(INN)**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ethinyl estradiol)의 에테르(ether) 유도체. 구강 피임약으로 사용한다.

프로게스토겐(progestogen) : 그것들의 임신전의 효과를 고려하여 명명된 스테로이드들 중의 한 종류인데, 그것은 임신을 시작하게 하고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이 여성 호르몬들은 임신을 위하여 그리고 임신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자궁을 준비시킨다. 그것들은 배란을 막기 때문에, 많은 프로게스틴이 피임약의 성분들로서 사용한다. 이것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INN)*** : 체내의 제1기 프로게스틴이며 에스트로겐 · 안드로겐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의 생화학 과정에서의 중간물. 그것은 난자 방출 후 황색체에 의해서 생성되고 부신 · 태반 · 고환에서 생성된다.

(b) **프레그난디올(pregnandiol)** : 프로게스테론보다 훨씬 더 약한 생물학적 활성도를 갖고 있는 천연적으로 생기는 프로게스틴

(4) 그 밖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안드로겐(androgen) : 위에 포함되지 않은 성호르몬의 중요한 그룹이며 주로 고환에서 생성되며 난소, 부신피질과 태반에서 적은 양이 생성된다. 안드로겐은 남성 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안드로겐은 신진대사 등에 영향을 미치며 동화작용을 한다.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INN)**은 가장 중요한 안드로겐들 중 하나이다.

이 부분은 또한 항에스트로겐 · 항안드로겐과 항프로게스테론(항프로게스틴 · 항에스타겐)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데 사용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들을 포함한다. 스테로이드 항프로게스틴은 몇몇의 당뇨병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게스틴 길항제이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오나프리스톤(onapristone)(INN)**과 **아글레프리스톤(aglepristone)(INN)**을 포함한다.

이들 스테로이드 중 국제무역상 중요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본 표는 그 물품의 약명을 알파벳순으로 기재하였고 그 주된 호르몬 작용을 표시하였다. 사용한 품명은 WHO에서 공표한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preparations(INN)나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Modified(INNM)에 의하였으며, **화학명**은 IUPAC의 1957년 스테로이드 품목분류규제에 의한 것이다.

*
* *

주로 호르몬 기능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일람표

간략명칭 화 학 명	주 호르몬 기능
아드레노스테론 안드로스트-4-엔-3,11,17-트리온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INN) 11b,21-디히드록시-3,20-디옥소프레군-4-엔-18-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알릴에스트레놀 (INN) 17a-알릴로에스트르-4-엔-17b-올	프로게스토겐
(간략명칭 없음) 5a-안드로스탄-3,17-디온	안드로겐 중간체
안드로스타놀론 (INN) 17b-히드록시-5a-안드로스탄-3-온	안드로겐
안드로스텐디올 안드로스트-5-엔-3b,17b-디올 안드로스트-5-엔-3b,17a-디올	동화작용(同化作用) 중간체
(간략명칭 없음) 안드로스트-4-엔-3,17-디온	안드로겐 중간체
안드로스테론 3a-히드록시-5a-안드로스탄-17-온	안드로겐
베타메타손 (INN) 9a-플루오로-11b,17a,21-트리히드록시-16b-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블라스테론 (INN) 17b-히드록시-7a,17a-디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클로르마디논 (INN) 6-클로로-17a-히드록시프레그나-4,6-디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간략명칭
화 학 명

주 호르몬 기능

클로로프레드니손 (INN) 6a-클로로-17a,21-디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11,20-트리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클로코르톨론 (INN) 9a-클로로-6a-플루오로-11b,21-디히드록시-16a-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클로스테볼 (INN) 4-클로로-17β-히드록시안드로스-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코르티코스테론 11β,21-디히드록시프레그-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코르티솔 - 하이드로코르티손 참조	
코르티손 (INN) 17α,21-디히드록시프레그-4-엔-3,11,20-트리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1-데하이드로코르티코스테론 21-히드록시프레그-4-엔-3,11,20-트리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데옥시코르티코스테론 - 데속시코르톤 참조	
데속시코르톤 (INN) 21-히드록시프레그-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INN) 9α-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16α-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디히드로안드로스테론 5α-안드로스-3α,17β-디올	안드로겐 중간체
다이드로게스테론 (INN) 9β,10α-프레그나-4,6-디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에쿠일레닌 3-히드록시옥에스트라-1,3,5(10),6,8-펜타엔-17-온	에스트로겐
에쿠일린 3-히드록시옥에스트라-1,3,5(10),7-테트라엔-17-온	에스트로겐

간략명칭
화 학 명

주 호르몬 기능

에스트라디올 (INN) 오에스트라-1,3,5(10)-트리엔-3,17 β -디올	에스트로겐
에스트리올 (INN) 오에스트라-1,3,5(10)-트리엔-3,16 α ,17 β -트리올	에스트로겐
에스트론 (INN) 3-히드록시오에스트라-1,3,5(10)-트리엔-17-온	에스트로겐
에티닐에스트라디올 (INN) 17 α -에티닐오에스트라-1,3,5(10)-트리엔-3,17 β -디올	에스트로겐
에티스테론 (INN) 17 α -에티닐-17 β -히드록시안드로스트-4-엔-3-온	프로게스토겐
에틸에스트레놀 (INN) 17 α -에틸오에스트르-4-엔-17 β -올	동화작용(同化作用)
에티노디올 (INN) 17 α -에티닐오에스트르-4-엔-3 β ,17 β -디올	프로게스토겐
플루드로코르티손 (INN) 9 α -플루오로-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프레군-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메타손 (INN) 6 α ,9 α -디플루오로-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16 α -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오시놀론 (INN) 6 α ,9 α -디플루오로-11 β ,16 α ,17 α ,21-테트라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오코르톨론 (INN) 6 α -플루오로-11 β ,21-디히드록시-16 α -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오로메톨론 (INN) 9 α -플루오로-11 β ,17 α -디히드록시-6 α -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9α-플루오로프레드니솔론 9 α -플루오로-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간략명칭
화 학 명

주 호르몬 기능

플로옥시메스테론 (INN) 9 α -플루오로-11 β ,17 β -디히드록시-17 α -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안드로겐
플루프레드니덴 (INN) 9 α -플루오로-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16-메틸렌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프레드니솔론 (INN) 6 α -플루오로-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란드레놀론 6 α -플루오로-11 β ,16 α ,17 α ,21-테트라히드록시프레그-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포르모코르탈 (INN) 3-(2-클로로에톡시)-9 α -플루오로-6-포르밀-11 β ,21-디히드록시-16 α ,17-이소프로필리덴디옥시프레그나-3,5-디엔-20온 21-아세테이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게스토노론 (INN) 17 β -에틸-17 α -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하이드로코르티손 (INN) 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프레그-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 (INN) 17 α -히드록시프레그-4-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라이네스트레놀 (INN) 17 α -에티닐오에스트르-4-엔-17 β -올	프로게스토겐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INN) 17 α -히드록시-6 α -메틸프레그-4-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메게스트롤 (INN) 17 α -히드록시-6-메틸프레그나-4,6-디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메스타놀론 (INN) 17 β -히드록시-17 α -메틸-5 α -안드로스탄-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메스테롤론 (INN) 17 β -히드록시-1 α -메틸-5 α -안드로스탄-3-온	안드로겐

간략명칭
화 학 명

주 호르몬 기능

메스트라놀 (INN) 17 α -에티닐-3-메톡시오에스트라-1,3,5(10)-트리엔-17 β -올	에스트로겐
메탄디에논 (INN) 17 β -히드록시-17 α -메틸안드로스타-1,4-디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메테놀론 (INN) 17 β -히드록시-1-메틸-5 α -안드로스트-1-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메탄드리올 (INN) 17 α -메틸안드로스트-5-엔-3 β ,17 β -디올	동화작용(同化作用)
2-메틸하이드로코르티손 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2 β -메틸프레군-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6α-메틸하이드로코르티손 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6 α -메틸프레군-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메틸노르테스토스테론 17 β -히드록시-17 α -메틸오에스트르-4-엔-3-온	프로게스토겐
17α-메틸로에스트라디올 17 α -메틸오에스트라-1,3,5(10)-트리엔-3,17 β -디올	에스트로겐
메틸프레드니솔론 (INN) 11 β ,17 α ,21-트리히드록시-6 α -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메틸테스토스테론 (INN) 17 β -히드록시-17 α -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안드로겐
난드로론 (INN) 17 β -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노르에탄드로론 (INN) 17 α -에틸-17 β -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노르에티스테론 (INN) 17 α -에티닐-17 β -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온	프로게스토겐
노르에티노드렐 (INN) 17 α -에티닐-17 β -히드록시오에스트르-5(10)-엔-3-온	프로게스토겐

간략명칭
화 학 명

주 호르몬 기능

노르게스트렐 (INN)

프로게스토겐

13β-에틸-17α-에티닐-17β-히드록시곤-4-엔-3-온

노르메탄드론 - 메틸노르테스토스테론 참조

노르테스토스테론 - 난드롤론 참조

옥사볼론 (INN)

동화작용(同化作用)

4,17β-디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온

옥시메스테론 (INN)

동화작용(同化作用)

4,17β-디히드록시-17α-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옥시메톨론 (INN)

동화작용(同化作用)

17β-히드록시-2-히드록시메틸렌-17α-메틸-5α-안드로스탄-3-온

파라메타손 (INN)

코르티코스테로이드

6α-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16α-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프라스테론 (INN)

안드로겐

3β-히드록시안드로스트-5-엔-17-온

프레드니솔론 (INN)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1β,17α,21-트리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프레드니손 (INN)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7α,21-디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11,20-트리온

프레드닐리덴 (INN)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1β,17α,21-트리히드록시-16-메틸렌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프레그네놀론 (INN)

코르티코스테로이드

3β-히드록시프레그-5-엔-20-온

프로게스테론 (INN)

프로게스토겐

프레그-4-엔-3,20-디온

스타놀론 - 안드로스타놀론 참조

간략명칭
화 학 명

주 호르몬 기능

테스토스테론 (INN)

안드로겐

17 β -히드록시안드로스트-4-엔-3-온

티오메스테론 (INN)

동화작용(同化作用)

1 α ,7 α -디(아세틸티오)-17 β -히드록시-17 α -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트리암시놀론 (INN)

코르티코스테로이드

9 α -플루오로-11 β ,16 α ,17 α ,21-테트라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C)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트롬복산(thromboxane) 그리고 류코트리엔(leukotriene) · 그 유도체와 구조적 유사체

이 생성물들은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의 유도체다.

(1)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가장 중요한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 유도체는 호르몬으로서 미소량에서도 작용하는 그리고 프로스타노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포함하는 내생적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이다. 프로스타글란딘은 혈액 순환 · 콩팥 기능 그리고 엔드로크린(endocrine) 체계[예를 들면 황체(黃體)에 의한 프로게스테론의 생성을 줄임으로써]의 조절에 영향을 끼치며 ; 이것들은 또한 유연한 근육의 수축 혹은 혈관의 확장을 자극하고 혈소판 응집을 막으며 위선분비를 조절한다. 이것들은 아래의 프로스타글란딘 · 유도체 그리고 구조적 유사체를 포함한다.

- (a) **알프로스타딜(alprostadil)**(INN)(프로스타글란딘 E₁) : 생물학적 추출물(extract) 등에서 결정화된 1기 프로스타글란딘이다. 이것은 혈관확장제로 사용한다. 이것은 또한 콩팥 껍질에서 에리트르포에틴의 방출을 자극하는 기능을 하고 혈액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 (b) **알파프로스톨(alfaprostol)**(INN) : 당나귀 · 노새 등의 암컷들의 불임증 치료에 사용하는 합성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 (c) **틸수프로스트(tilsuprost)**(INN) : 단힌 고리구조를 가지며 산소와 탄소 원자가 질소와 황 원자로 대체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합성 프로스타글란딘이며 프로스타글란딘 수용체 작용제이다.

이 그룹은 **프로스타렌(prostalene)**(INN) · **디노프로스트(dinoprost)**(INN) 같은 다른 합성 생성물들도 포함하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생성물들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유하고 비슷한 생리학적 활성도를 가지고 있다.

(2) 트롬복산(thromboxane)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은 프로스타글란딘처럼 아라키돈산에 의해 세포 내에서 합성되며 ; 이들의 기능은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과 비슷하고 이들의 구조도 매우 비슷하지만, 프로스탄 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포함하지 않는다. 트롬복산은 생합성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에서 유도된다. 이들은 혈소판 응집과 동맥의 수축을 야기하고 다불포화 지방산 작용의 중요한 조절 인자이다. 류코트리엔은 백혈구 내에서의 생성과 이들의 복합적인 트리엔 구조로 인해 그렇게 명명되었다. 이들은 효능이 있는 기관지 수축제이고 과민성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a) **트롬복산 B₂** : 혈관수축제 · 기관지수축제와 혈액 혈소판 응집의 유발인자
- (b) **류코트리엔 C₄** :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이 폐의 기도(氣道)에 작용하는 효과보다 100배에서 1,000배 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 다른 호르몬들

여기에 분류한 것들은 그 구조가 위에 언급된 호르몬들의 구조와는 다른 그 밖의 호르몬들이다. 한 예로 멜라토닌(melatonin)이 있는데, 그것은 송과선(松果腺 : pineal gland)에서 발견되고 인돌의 유도체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 분류하는 그 밖의 호르몬들은 다음과 같다.

(1) 카테콜라민(catecholamine) 호르몬들, 그 유도체와 구조적인 유사체

이 호르몬 그룹은 부신(adrenal gland)의 수질층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포함한다.

- (a) **에피네프린(epinephrine)**(INN)(아드레날린이나 (-)-3,4-디히록시- α -[(메틸아미노)메틸]벤질 알코올)과 **라시핀프린(racepinephrine)**(INN)((\pm)-3,4-디히록시- α -[(메틸아미노)메틸]벤질 알코올) : 이 두 호르몬들의 구조는 화학적인 이름 1-(3,4-디히록시페닐)-2-메틸아미노에탄올과 일치한다. 에피네프린은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밝은 갈색이나 거의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그것은 물과 유기 용제(溶劑 : solvent)에서 조금 녹는다. 그것은 말의 부신에서 유도될 수 있으나 합성에 의해서 주로 얻어진다. 고혈압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구(corpuscle)의 수와 혈액속에 당의 함량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강한 혈관 수축 작용을 한다.
- (b)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INN)[레바테레놀,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2-아미노-1-(3,4-디히드록시페닐)에탄올] : 노르에피네프린은 물에서 녹는 흰 결정체로 나타난다. 이것의 생리학적 활성도는 아드레날린과 에페드린 사이의 중간이다.

(2) 아미노산 유도체

- (a) **레보타이록신(levothyroxine)**(INN)과 DL-타이록신(3-[4-(4-히드록시-3,5-디오도페녹시(diiodophenoxy))-3,5-다이아이오도페닐(diiodophenyl)]알라닌이나 3,5,3',5'-테트라아이오도티로닌(tetraiodothyronine) : 타이록신은 갑상선에서 추출되거나 합성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것은 방향성(芳香性) 아미노산이며 ; 물이나 어떠한 일반적인 용제(溶劑 : solvent)에서도 녹지 않는 흰색이나 누르스름한 결정체들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초 대사율과 산소 소모를 증가시키고 교감 신경계를 움직이고 단백질과 지방의 작용을 조절하며 유기체의 모든 요오드 결핍을 보충하며 갑상선종과 크레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L-이성체는 활성체이다. 나트륨 식염은 유사한 활성도를 갖고 물에 조금 녹는 흰 가루이다.
- (b) **리오타이로닌(liothyronine)**(INN)과 **래타이로닌(rathyronine)**(INN) (DL-3,5,3'-트리요오드타이로닌)(3-[4-(4-히드록시-3이오도페녹시-3,5-다이아이오도페닐)]알라닌)(DL-3,5,3'-triiodothyronine)(3-[4-(4-hydroxy-3-iodophenoxy)-3,5-diiodophenyl]alanine) : 트리아이오드타이로닌은 갑상선에서도 추출되며 ; 이것의 생리학상의 활성도는 타이록신보다도 더 크다.

제외규정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1) 호르몬 효과는 없지만 호르몬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물품

- (a) 안드로스트-5-엔-3알파,17알파-디올, 안드로스트-5-엔-3알파,17베타-디올(제2906호)과 이들의 디아세테이트(제2915호)
- (b) 아드레날론(INN)(3,4'-디히드록시-2-메틸아미노아세토페논)(제2922호)

- (c) **제2922호**에 분류하는 다음의 물품
- (i) 2-아미노-1-(3,4-디히드록시페닐)부탄-1-올
 - (ii) 코르바드린(corbadrine)(INN)(2-아미노-1-(3,4-디하이드록시페닐)프로판-1-올 · 3,4-디하이드록시놀에페드린 · 호모-아르테레놀
 - (iii) 테옥시에피네프린(테옥시아드레날린 · 1-(3,4디하이드록시페닐)-2-메틸아미노에탄 · 에피닌)
 - (iv) 3',4'-디하이드록시-2-에틸아미노 아세토페논(4-에틸아미노아세틸카테콜)
 - (v) 1-(3,4-디하이드록시페닐)-2-메틸아미노프로판-1-올-(3,4-다하이드록시에페드린)
 - (vi) (±)-엔-메틸에피네프린((±)-1-(3,4-디하이드록시페닐)-2-디메틸아미노에탄올 · 메타드렌 · (±)엔-메틸아드레날린)
- (2) 호르몬 효과는 있지만 호르몬 구조를 갖지 않는 물품
- (a) 디엔스트롤(dienestrol)(INN)(3,4-비스(p-히드록시페닐)헥사-2, 4-디엔(**제2907호**))
 - (b) 헥세스트롤(hexestrol)(INN)(3,4-비스(p-히드록시페닐)헥산(**제2907호**))
 - (c) 디에틸stil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INN) (트랜스-3,4-비스(p-하이드록시페닐)헥스-3-엔(**제2907호**))와 그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제2909호**) · 그 디프로피오네이트(**제2915호**) · 그 푸로에이트(**제2932호**)
 - (d) 클로미펜(clomifene)(INN)(항에스트로젠)(제2922호)
 - (e) 타목시펜(tamoxifen)(INN)(항에스트로젠)(제2922호)
 - (f) 플루타미드(flutamide)(INN)(항안드로젠)(제2924호)
 - (g) 다루센탄(darusentan)(INN)(**제2933호**), 아트라센탄(INN)(**제2934호**) 및 시타센탄(INN)(**제2935호**)과 같은 엔도테린 길항제
- (3) 호르몬 효과를 갖는 천연물질이지만 사람과 동물의 체내에서 분비되지 않는 물질
- (a) 제아라레논(zearalenone) · 신진대사제(**제2932호**)
 - (b) 아스페리리신(asperlicin) · 콜레시스토크닌(cholecistoquinine)(**제2933호**)
- (4) 때때로 호르몬으로 간주되지만 진정한 호르몬작용을 하지 않는 다음 물품
- (a) 시스틴(cystine) · 시스테인(cysteine)(INN)와 이들의 염산염(**제2930호**)
 - (b) 메티오닌(methionine)과 그 칼슘염(**제2930호**)
 - (c)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조절체[예: 세프라놀론(INN)(**제2914호**) · 도파민(**제2922호**) · 아세틸콜린(**제2923호**) · 세로토닌(5-하이드록시트립타민이나 하이드록시-3-(베타-아미노틸)인돌)(**제2933호**) · 히스타민(**제2933호**)와 관련 제품(예: 그들의 수용체 작용물질과 길항제)]
 - (d) 백혈병억제 인자 (인간)성장인자(growth factor) 엠필러민(INN)(**제2933호**)와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growth factor) 레피퍼민(INN)(**제2933호**)
 - (e) 라니체민(lanicemine)(INN)(**제2933호**) 및 네보스티벨(INN)(**제2924호**)과 같은 NMDA(N-메틸-D-아스파르트산)수용체 길항제
 - (f) 헤파린(heparin)(**제3001호**)
 - (g) 변성한 면역물품(**제3002호**)

- (5) 천연이나 합성의 식물성장조절제(예: 식물호르몬)
- (A) 혼합되어 있지 않거나 소매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화학성분에 따라 분류한다. 예:
- (a) 알파-나프틸아세트산과 그 나트륨염(제2916호)
 - (b)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디),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과 4-클로로-2-메틸-페녹시아세트산(MCPA)(제2918호)
 - (c) 베타-인돌릴아세트산과 나트륨염(제2933호)
- (B) 조제되거나 소매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808호에 분류한다.
- (6) 각각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트롬복산(thromboxane)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의 길항제[예: 세라트로다스트(INN)(제2918호)와 몬텔루카스트(INN)(제2933호)]
- (7) 아타퀴마스트(ataquimast)(INN)과 같은 종양괴사인자(TNF : tumor necrosis factor)의 길항제(제2933호)
- (8) 제3002호의 면역물품
- (9) 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특히 “리타드 인슐린(Retard Insulin)”(아연화인슐린·프로타민 아연화인슐린·글로빈인슐린·아연화글로빈인슐린·히스톤인슐린)

○
○ ○

[소호해설]

소호 제2937.11호부터 제2937.19호까지

이 소호들에는 둘 이상의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펩타이드 호르몬(peptide hormone)을 포함한다.

제12절

글리코시드와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제2938호 - 제2939호)

총설

이 절에서, “유도체(derivative)”란 해당 호 앞부분의 화합물에서 얻어질 수 있는 화학 화합물로서 기본 화학구조를 포함하여 어미 화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29.38 -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8.1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2938.90 - 기타

글리코시드(glycoside)는 주로 식물계에 존재한다. 보통은 산·염기나 효소의 작용으로 당(糖) 부분과 비당(非糖) 부분(아글리콘)으로 분해된다. 이들 부분은 당의 아노머 탄소 원자(anomeric carbon atom)를 통하여 서로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제2940호의 백시닌과 하마멜리탄닌같은 물질은 글리코시드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장 흔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글리코시드는 O-글리코시드로서 내부에 보통 당의 절반과 아글리콘이 아세탈 관능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당의 아노머 탄소가 각각 질소·황이나 탄소 원자를 통하여 아글리콘과 연결되어 있는 자연발생적인 N-글리코시드·S-글리코시드와 C-글리코시드도 있다[예: 카시미로에딘(N-글리코시드)·시니그린(S-글리코시드)과 알로인(C-글리코시드)]. 때로 아글리콘은 에스테르기(ester group)에 의해 당에 연결된다.

글리코시드는 보통 무색의 고체 화합물이며 식물의 조직체 내에 있는 보존물을 형성하거나 자극제로 작용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치료 목적에 사용한다.

- (1) **루토시드(루틴)[rutoside(rutin)]*** : 많은 식물에 존재하며 특히 메밀[과고피럼 에스쿨렌텀 모엔크, 폴리고나시애(*Fagopyrum esculentum* Moench., *Polygonaceae*)]에 존재하고 약 3%를 함유한다[건조상태(dry basis) 기준].
- (2)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digitalis glycoside)** : 디기탈리스(*Digitalis*) 속의 식물(예: *D. lanata*, *D. purpurea*)에 존재하며, 어떤 것은 심장 자극제로서 의학에서 중요하다. 이 군은 **디기톡신**(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무취이며 독성이 강하다)·**디곡신**과 **디기토닌**(디기탈리스의 사포닌으로서 화학시약으로 사용한다)을 포함한다.
- (3) **글리시리진(glycyrrhizin)과 글리시리제이트(glycyrrhizate)** : 감초근(甘草根: liquorice root)에 함유되어 있으며 무색의 결정이다. 암모늄글리시리제이트(ammonium glycyrrhizate)는 적갈색 덩어리로서 음료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글리시리제이트는 의학에 사용한다.

- (4) **스트로판틴(strophanthin)** : 스트로판투스(*Strophanthus*) 속의 많은 종의 식물에 존재하며 ; 심장 자극에 매우 효과적이다. **유바인(ouabain)**이나 **스트로판틴-지(Strophanthin-G)**로 알려진 것도 포함되는데 무색 결정이고 독성이 강하다.
- (5) **사포닌(saponin)** : 식물계에 매우 풍부한 무정형(無定形) 글리코시드(glycoside)이며 ; 재채기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다. 이 수용액은 흔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의약·세척제 제조·거품 소화기에 사용한다.
- (6) **알로인(aloin)** : 여러 종의 알로에(aloe)의 잎에 함유되어 있다.
- (7) **아미그다린(amygdalin)** : 쓴 아몬드와 여러 과일 핵에 함유되어 있으며 거담제(祛痰劑 : expectorant)로 사용한다.
- (8) **아르부틴(arbutin)** : 아르부투스(arbutus)의 잎에 함유되어 있으며 이뇨제(diuretic)로 쓰인다.
- (9) **시니그린(sinigrin)** : 흑색 겨자종자와 양고추냉이뿌리에 함유되어 있으며 의약품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이나 합성 글리코시드의 특정 탄닌 유도체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글리코시드(glycoside)류와 그 유도체의 **천연혼합물**을 분류하며[예: 푸르푸레아 글리코시드A와 B를 함유하는 디기탈리스글리코시드·디기톡신·기톡신·기타록신(gitaloxin) 등의 천연 혼합물] ; 그러나 고의로 혼합하거나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1) 뉴클레오시드와 뉴클레오티드(**제2934호**)
- (2) 알칼로이드(예: 토마틴)(**제2939호**)
- (3) 비천연의 글리코시드(glycoside)(제2937호나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로서 내부의 글리코시드(glycoside) 결합이 아노머 탄소에서 에테르화(etherification)에 의해 형성된 아세탈 관능인 것[트리베노시드(INN)](**제2940호**)
- (4) 향생제(예: 토요카마이신)(**제2941호**)

29.39 -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부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테바인, 이들의 염

2939.19 -- 기타

2939.2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30 - 카페인과 그 염

-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2939.43 -- 카틴(INN)과 그 염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2939.45 -- 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2939.49 -- 기타

- 테오피린·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 -- 페네틸린(INN)과 그 염

2939.59 -- 기타

-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2939.62 -- 엘고타민(INN)과 그 염

2939.63 -- 리세르그산과 그 염

2939.69 -- 기타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1 -- 코카인·엑고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9.72 -- 코카인·엑고닌, 이들의 염·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9.79 -- 기타

2939.80 - 기타

이 알칼로이드는 착유기염기(complex organic base)이며 ; 강력한 생리작용을 한다. 일부는 합성으로 얻어지며 모두가 얼마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혼합하지 않은 알칼로이드(alkaloid)와 알칼로이드의 천연혼합물(예: 베라트린이나 아편의 총알칼로이드)을 포함하나 고의적인 혼합물과 조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아편의 건조수액과 같은 수액과 식물성 추출물(extract)은 **제외한다**(제1302호).

이 호에는 알칼로이드(alkaloid)와 수소첨가·탈수소·산소첨가·탈산소 유도체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유도체의 구조는 천연알칼로이드의 구조와 대부분 동일하다.

(A) 아편의 알칼로이드(alkaloid)와 이들의 유도체와 이들의 염

- (1) **모르핀(morphine)*** : 아편에 존재하며 ; 무색의 결정체로서 ; 강력한 마취제이며 ; 독성이 강하다.
- (2) **디히드로 모르핀(dihydromorphine) · 데소모르핀(desomorphine)**(INN)(디히드로데옥시 모르핀),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INN)(디히드로모르피논)과 **메토폰(metopon)**(INN)(5-메틸디히드로모르피논)
- (3)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헤로인) : 결정성 백색 가루로서 ; 코데인과 모르핀 대신 진정제로 사용한다.
- (4) **에틸모르핀(ethylmorphine)** : 결정성 백색 가루로서 무취이며 ; 내복용으로는 최면제나 진정제와 외용으로는 국부 마취제로 사용한다.
- (5) **코데인(codeine)**(메틸모르핀, 모르핀의 환에틸 에테르) : 모르핀과 같이 아편에 존재한다. 결정체로서 ; 모르핀의 대용으로 진정제로 사용한다.
- (6)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INN) · **히드로코돈(hydrocodone)**(INN)(디히드로코데이논) · **옥시코돈(oxycodone)**(INN)(디히드로히드록시코데이논)
- (7) **나르세인(narceine)** : 아편의 이차 알칼로이드로서 ; 결정체이며 ; 최면제나 진통제로 사용한다.
- (8) **노스카핀(noscapine)**(INN)(나르코틴) : 아편의 이차 알칼로이드로서 결정체이며 모르핀 보다는 작용도 약하고 독성도 약간 있다.
- (9) **코타르닌(cotarnine)과 히드로코타르닌(hydrocotarnine)** : 나르코틴의 유도체이다.
- (10) **파파베린(papaverine)** : 아편의 이차 알칼로이드로서 ; 결정체이며 ; 마취와 진정작용을 하고 독성은 모르핀보다 약하다.
- (11) **염산에타베린(ethaverine hydrochloride)**(INN)(1-(3,4-디에톡시벤질)-6,7-디에톡시 이소퀴놀린 히드로클로라이드)
- (12) **테바인(thebaine)** : 아편의 이차 알칼로이드로서 ; 결정체이고 ; 무취이며 ; 독성이 있다.
- (13) **양귀비 줄기농축물(concentrates of poppy straw)** : 양귀비(*Papaver somniferum*)의 일부분에서 얻어지는 알칼로이드의 천연 혼합물로서 추출된 후 정화작업을 거친다. 전 중량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아편 알칼로이드(alkaloid of opium)의 유도체는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에폭시 가교 모르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B) 기나(cinchona)의 알칼로이드(alkaloid)와 이들의 유도체와 이들의 염

- (1) **키닌(quinine)*** : 기나(*Cinchona*)속 식물의 껍질, 특히 기나오피시날리스(*Cinchona officinalis*) · 기나칼리사야(*Cinchona calisaya*)와 기나수시러브라(*Cinchona succirubra*)의 껍질(bark)에 함유되어 있으며 결정성 백색 가루이다. 키닌과 그의 염은 혈액 중에 존재하는 원생동물의 원형질을 마취하는 효과가 있으며 해열제와 항 말라리아제로 사용한다.
- (2) **키니딘(quinidine)** : 기나(*Cinchona*)속 식물의 껍질에 함유되어 있다. 결정체이며 ; 황산 키닌의 모액에서 추출하여 얻을 수도 있다.
- (3) **신코닌(cinchonine)** : 기나(*Cinchona*)속 식물의 껍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 중에서 키닌 다음가는 중요물질로서 ; 결정체이다.
- (4) **신코니딘(cinchonidine)** : 기나(*Cinchona*) 껍질에 있으며 ; 결정체이다.
- (5) **탄닌산키닌(quinine tannate)**

(C) 카페인과 그 염*

카페인은 커피콩 · 차 · 콜라 너트(*cola nut*)를 추출하여 얻거나 ; 합성의 방법으로 얻어진다. 실크 모양의 결정으로 의약에 사용한다.

(D)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마황의 알칼로이드는 에페드라 중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로, 이들은 합성하여 얻을 수도 있다.

- (1) **에페드린(ephedrine)*** : 에페드라 벌가리스(*Ephedra vulgaris*)에 함유되어 있고 또한 합성으로도 얻으며 ; 무색의 결정체로서 ; 의약에 사용한다.
- (2)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INN)**
- (3) **카틴(INN)(놀슈도에페드린)**
- (4) **놀에페드린(norephedrine)**
- (5) **메틸에페드린(methylephedrine)**
- (6) **메틸슈도에페드린(Methylpseudoephedrine)**
- (7) 마황의 알칼로이드의 유도체. 예: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라세미체) · 에타페드린(INN)**

(E) 테오피린(theophylline)과

아미노필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aminophylline(theophylline-ethylenediamine)]과 이들의 유도체와 ; 이들의 염

테오피린(theophylline)*: 차에 존재하며 합성으로도 얻는다. 결정체로서 이뇨제(diuretic)로 사용하며 아미노필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도 그러하다.

(F) 맥각 알칼로이드(alkaloid of rye ergot)와 이들의 유도체와 이들의 염

- (1) **엘고메트린(ergometrine)**(INN)(9,10-디데히드로-엔-[(에스)-2-히드록시-1-메틸에틸]-6-메틸엘고린-8-베타-카르복사미드)(엘고노바인) : 4면체나 미세한 바늘 모양의 결정체이다. 옥시토식(oxytocic)으로 사용되고 리세르가이드(lysergide)(INN)의 제조에 선구물질(precursor)로 사용한다(제29류의 끝에 선구물질 목록 참조). 하나의 중요한 유도체는 말레산 엘고메트린(ergometrine maleate)이며 ; 이것은 말레산 엘고노바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 (2) **엘고타민(ergotamine)**(INN)(12-히드록시-2'-메틸-5'알파(페닐메틸)엘고타민-3',6',18-트리온) : 혈관수축 신경약과 리세르가이드(lysergide)(INN)의 제조에 선구물질로 사용한다(제29류의 끝에 선구물질 목록 참조). 이것의 중요한 유도체에는 숙신산 엘고타민과 주석산 엘고타민을 포함한다.
- (3) **리세르그산(lysergic acid)**(9,10-디데히드로-6-메틸엘고린-8-카복실산) : 맥각알칼로이드를 알칼리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함으로써 제조되며, 클라비셉스 파스팔리(*Claviceps paspali*)로부터도 제조된다. 결정체는 다면체판이나 비늘(scale) 모양이며 향정신의학이나 리세르가이드(lysergide)(INN)의 제조에서 선구물질로 사용한다(제29류의 끝에 선구물질 목록 참조).
- (4) 그 밖의 **맥각알칼로이드(ergot alkaloid)** : 예를 들면, 엘고신 · 엘고크리스틴 · 엘고크립틴 · 엘고코르닌 · 메틸엘고메트린

(G) 니코틴과 그 염

니코틴* : 담배잎에 존재하는 알칼로이드이며 ; 합성으로도 얻을 수 있다. 무색의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는 갈색으로 변하고 ;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강염기로서 독성이 있고 결정성 염을 형성하며 ; 식물의 살균 · 살충제에 사용한다.

(H) 그 밖의 식물성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와 염

- (1) **아레콜린(arecoline)** : 빈랑나무의 핵[betel-nut(areca-nut)]에 존재하는 알칼로이드이다.
- (2) **아코니틴(aconitine)** : 맹독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코니터스 나펠러스(*Aconitus napellus*)의 건조한 뿌리에서 추출되며, 강력한 진정제로서 의약에 사용한다.
- (3) **피소스티그민(physostigmine)**(에세린) : 칼라바르콩(Calabar-bean)에서 얻어지며 ; 무색의 결정체로서 공기에 노출하면 적황색으로 변하고 ; 의약에 사용한다.
- (4) **필로카르핀(pilocarpine)** : 필로카르퍼스자보란디(*Pilocarpus jaborandi*) 속의 식물에 존재하는 주요 알칼로이드로서 ; 무색의 덩어리이며, 공기에 노출하면 갈색으로 변한다. 필로카르핀과 그 염은 의약(발한촉진제)이나 안과의사가 사용하고, ; 양모로션 제조에 사용한다.
- (5) **스파르테인(sparteine)** : 금작화에 존재하는 알칼로이드로서 ; 무색 액체이며 황산 스파르테인은 강심제(heart stimulant)에 사용한다.
- (6) **아트로핀(atropine)** : 주로 다튜라 스트라모튬(*Datura stramonium*)식물에서 얻으며 ; 또한 합성방법으로도 얻고 ; 이들은 결정체이며 ; 맹독성은 눈의 동공을 팽창시킨다.
- (7) **호마트로핀(homatropine)** : 무색의 결정체이며 ; 아트로핀과 동일한 물리화학적 작용을 갖고 있다.

- (8) **효사이아민(hyoscyamine)** : 아트로파벨라도나(*Atropa belladonna*)와 효사이아머스(*Hyoscyamus*)속 식물에 있는 알칼로이드이며 무색 결정으로서 ; 독성이 높다. 그의 염(예: 황산염과 브롬화수소산염)은 의약품에 사용한다.
- (9) **스코폴라민(히오스신)** : 다튜라(*Datura*)속 식물에 존재하며 무색 시럽의 액체이거나 무색의 결정체이다. 이의 염(예: 브롬화수소산염과 황산염)은 결정체이며 ; 의약품에 사용한다.
- (10) **콜히친(colchicine)** : 콜치쿰 오텍네일(*Colchicum autumnale*)식물 중에 존재하며 검 상태의 덩어리 · 황색 가루 · 결정물이나 플레이크(flake)이며 ; 의약품에 사용하고 독성이 매우 강하다.
- (11) **베라트린(veratrine)** : 사바딜라(sabadilla) 종자에서 추출한 천연의 혼합 알칼로이드이고 ; 무정형의 백색 가루로서 ; 흡습성이 있고 자극성과 심한 재채기를 일으키며 ; 독성이 있으며 ; 의약품에 사용한다.
- (12) **세바딘(cevadine)** : 결정화한 베라트린(veratrine)에 상당하다.
- (13) **코카인(cocaine)** : 결정성이며 여러 가지의 코카, 특히 에리트록시룸코카(*Erythroxylum coca*)의 엽에서 추출하여 얻거나 합성으로 얻는다. 거래상의 조(粗 : crude)코카인은 순수하지 않으나 80%부터 94%까지의 코카인을 함유하며 ; 이러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코카인의 수용액은 알칼리 반응을 일으켜 ; 여러 염을 형성하고 ; 강력한 마취작용을 한다.
- (14) **에미틴(emetine)** : 우라고가이페카큐아나(*Uragoga ipecacuanha*)의 뿌리(根)에 함유되어 있다. 무정형의 백색 가루로서 빛에 노출되면 황색으로 변하며 ; 거담제(expectorant)와 토제(emetic)로 사용하고 ; 이 염은 아메바 적리 치료에 사용한다.
- (15) **스트리키닌(strychnine)** : 스트리크노스(*Strychnos*) 속의 여러 가지 식물(닉스보미카, 세인트이그나티우스두)에서 추출한 것이다. 견과 비슷한 결정체로서 ; 독성이 강하다. 결정성 염을 형성하며 의약품에 사용한다.
- (16) **테오브로민(theobromine)** : 코코아(cocoa)에서 추출하고 또한 합성으로도 얻는다. 결정성의 백색 가루로 이노제와 강심제로서 의약품에 사용한다.
- (17) **피페린(piperine)** : 피페니그럼(*Piper nigrum*)에서 추출하며 결정체이다.
- (18) **코니인(coniine)** : 코니움(헴록크)에 존재하며 또한 합성으로도 얻는다. 무색의 유상 액체로서 자극성취가 있으며 ; 독성이 강하고 ; 의약품에 사용한다.
- (19) **쿠라린(curarine)** : 쿠라리(curare)에서 추출하며 ; 의약품에 사용한다.
- (20) **포르피린(porphyrine)**(알칼로이드)
- (21) **토마틴(tomatine)**
- (22) **탄닌산 알칼로이드(alkaloid tannate)**(탄닌산켈리도닌 · 탄닌산콜키신 · 탄닌산펠레티에린 등)
- (23) **히드라스틴(hydrastine)**
- (24) **히드라스티닌(hydrastinine)**
- (25) **히드로히드라스티닌(hydrohydrastinine)**
- (26) **옥소히드라스티닌(oxohydrastinine)**
- (27) **트로핀(tropine)**(트로판-3-올)

(28) 트로피논(tropinone)

(29) 세페린(cephaeline)

(IJ) 그 밖의 비식물성의 알칼로이드

비식물성 알칼로이드는 특정 종류의 버섯[예: 사일로시브 속(the genus *Psilocybe*) 버섯에 있는 사일로사이빈(psilocybin)]과 동물[일부 두꺼비의 피부에 있는 부포테닌(bufoten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해양 생물체도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 (1) **진균류 알칼로이드** : 비리디카틴*[페니실리움 비리디카툼(*Penicillium viridicatum*)], 루구로바신 A[페니실리움 알칼로이드(penicillium alkaloid)] · 스포리데스민 A(동물의 안면습진을 유발하는 독소), 사이토칼라신 b, 테올로시딘 B4(인돌 알칼로이드 종양 촉진물), 페니트렘 D(곰팡이 독소), 로퀘포르틴(블루 치즈).
- (2) **동물 알칼로이드** : 히스트리오니코톡신*[남아메리카산 독침개구리 스파이로 피페리딘 (spiro piperidine)], 사만다린, 에파비티딘, 카스토라민과 무스코피리딘(사향노루와 캐나다산 비버로부터 추출된다).
- (3) **곤충 알칼로이드** : 코시넬린* 서브코시넬라 7-푼크타타(칠성무당벌레), 2-이소프로필-3-메톡시피라진[무당벌레(*Harmonia axyridis*)], 다니이돈[아프리카산 왕나비의 페로몬 (pheromone)], 글로메린(유럽산 노래기), 에필라크네네(멕시코산 콩 딱정벌레), 폴리야자 마크로리데 서브코시넬라 24-푼크타타(이십사점콩알무당벌레).
- (4) **해양 알칼로이드** : 바라신*[해초류(sea squirt : 바닷물충류)], 만자민(오키나와산 해면), 콘볼루타민 D(이끼벌레류의 동물), 테트로도톡신(일본산 복어), 유디스토민[주로 바다의 유디스토마(*Eudistoma*)속의 피막에서 추출된다].
- (5) **박테리아 알칼로이드** : 자연상태에서는 매우 드물다. 프로시아닌*.

*
* *

이 호의 특정 물질은 국제기구의 규정에 따라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로 간주하므로 제29류의 끝부분에 그 목록을 기록해 두었다.

제13절

그 밖의 유기화합물

(제2940호 - 제2942호)

29.40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A)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만을 분류한다. “당류(sugars)”라는 용어에는 단당류, 이당류와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 당류 단위 각각은 적어도 4개 이상 8개 이하의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최소한 한 개의 잠재적인 환원 카르보닐기(알데히드기나 케톤기)와 수산기·수소원자를 함유하는 비대칭 탄소 원자를 한 개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자당(蔗糖 : sucrose) :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1701호에 분류한다.
- b) 포도당과 유당 :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1702호에 분류한다.
- c) 맥아당 :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1702호에 분류한다. 이는 자당의 이성체이며 결정성 덩어리로 의약에 사용한다.
- d) 과당[라블로오스(laevulose)] :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1702호에 분류한다. 이는 포도당의 이성체로서 순수 상태에서는 황색 결정체이고 의약에 사용한다(당뇨병의 식이요법용)
- e) 알돌(alldol)(제2912호)과 아세토인(3-히드록시-2-부탄논)(제2914호) : 이들이 당류 단위가 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당류는 아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를 분류한다.

- (1) **갈락토오스(galactose)*** : 포도당의 이성체로서 유당을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하여 얻는다. 식물의 펙틴질과 점액질 중에 존재하며 순수한 것은 결정체이다.
- (2) **소르보오스(소르비노오스)[sorbose(sorbenose)]** : 포도당의 이성체이며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물에 잘 녹는다. 아스코르브산(비타민 씨)의 합성과 배양체 제조에 사용한다.
- (3) **크실로오스(xylose)**[우드 슈가(wood sugar)]($C_5H_{10}O_5$) : 백색 결정체로서 약의 제조(pharmacy)에 사용한다.
- (4) 자당의 이성체인 **트레할로오스(trehalose)**, 크실로오스의 이성체인 **리보오스(ribose)**와 **아라비노오스(arabinose)**, **라피노오스(raffinose)**($C_{18}H_{32}O_{16}$), **퓨코스(fucose)**·**람노오스(rhamnose)**($C_6H_{12}O_5$)·**디기톡소오스(digitoxose)**($C_6H_{12}O_4$)와 그 밖의 디옥시당류(deoxy sugars). 이들의 당류는 모두 본질적으로 실험용 물품이다.

이 호의 당류는 수용액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B) 당에테르(sugar ether)·당아세탈과 당에스테르(sugar ester)와 이들의 염

제2940호에는 또한 당에테르(sugar ether)·당아세탈(sugar acetal)·당에스테르(sugar ester)와 이들의 염을 포함한다. 당아세탈은 당의 두 개의 수산기 사이나 아노머탄소에서 형성되어 글리코시드(glycoside)를 부여하기도 한다. 제2940호에 있어서, 당에스테르(sugar ester)에는 아세탈 관능을 가진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관능은 당의 두 개의 수산기 사이나 아노머탄소에서 형성되어 글리코시드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천연의 글리코시드는 **제외한다**(제2938호). 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제2940호보다 뒤에 오는 호의 물품의 성분인 당에스테르와 에테르 역시 **제외한다**(이 류의 총설(E)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이들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hydroxypropyl sucrose)*** : 일종의 당 에테르(sugar ether)
- (2) **당(sugar)의 인산에스테르(phosphoric ester)**(예: 포도당과 과당의 인산염)과 그의 염(예: 바륨염·칼륨염 등) : 이들은 결정성이나 무정형의 가루로서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 (3) **슈크로오스 옥타 아세테이트(sucrose octa-acetate)** : 백색의 흡습성 가루이며 알코올 변성제·접착제·가소제와 살충제의 제조용·제지공업용·식품의 보강제로 사용한다.
- (4) **슈크로오스 모노 아세테이트(sucrose mono-acetate)** : 계면활성 성질이 있다.
- (5) **슈크로오스 아세테이트 이소부티레이트(sucrose acetate isobutyrate)** : 바니시(vernish)의 변성제(modifying agent)로 쓰인다.
- (6) **락티톨(lactitol)(INN)** (4-O-β-D-갈락토피라노실-D-글루시톨) : 감미제로 쓰인다.
- (7) **비천연 글리코시드(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글리코시드 결합은 아노머탄소 원자 상태에서 에테르화(etherification)하며, 생성된 아세탈 관능기이다 [예: α-메틸글루코시드·트리베노시드(INN)].

그러나 이 호에는 고의로 혼합한 당 에테르(sugar ether)·당 에스테르(sugar ester)나 이들의 염(salt)은 **분류하지 않으며**, 비 당질성분을 출발 물질로 하여 고의로 조제하거나 제조한 혼합물도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예: 제3823호의 지방산으로부터 만든 당 에스테르). 그 밖에도 이 호에는 화학 구조에 따라 제29류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당 무수물(無水物)·티오당류·아미노당류·우론산과 그 밖의 당 유도체를 **제외한다**.

29.41 - 항생물질(+)

- 2941.1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2941.2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2941.3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2941.4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 2941.5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 2941.90 - 기타

항생물질은 살아있는 미생물 조직에 의해서 분비되며 다른 미생물 조직을 죽이거나 이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은 주로 병원성의 미생물 조직 특히 박테리아나 세균에 대한 강력한 억제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종양에 대한 억제 효과에도 사용한다. 이들 항생물질은 혈액 중 1ml(밀리리터)당 2~3 μ g(마이크로 그램)정도의 농도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항생물질은 한 개의 물질이나 관련 물질들의 그룹으로 조성되며 이들의 화학구조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으며, 화학적으로 단일물의 것도 있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다양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 : 예를 들면, 노보비오신 · 세팔로스포린 · 스트렙토트리신 · 파로페넴(INN) · 도리페넴(INN) · 모노박탐[예: 아스트레오남(INN)]이며 이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니실린(penicillin)*이며 이는 페니실리움(*Penicillium*) 곰팡이균류의 여러 종으로부터 분비 생성 된다. 또한 이 종류에는 프로카인 페니실린(procaine penicillin)을 포함한다.
- (2) **슈가-릴레이티드(sugar-related)** : 예를 들면, 스트렙토마이신*
- (3)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과 이들의 유도체 : 예를 들면,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INN) · 옥시테트라사이클린(INN)*
- (4)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과 그 유도체(예: 티암페니콜과 플로르페니콜)
- (5) **마크로라이드(macrolide)** : 예를 들면, 에리트로마이신* · 암포테리신 B · 티로시딘
- (6) **폴리펩티드(polypeptide)** : 예를 들면, 액티노마이신 · 배시트라신 · 그라미시딘 · 티로시딘
- (7) **그 밖의 항생물질** : 예를 들면, 사르코마이신 · 반코마이신

이 호에는 또한 화학적으로 변성한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항생물질도 분류한다. 이들은 미생물 조직의 자연 성장에 의하여 생성된 성분을 분리한 다음 화학반응에 의한 구조 수정이나 사이드체인 선구물질(sidechain precursor)을 중간 성장체로 첨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그룹들이 세포변화[반(半)합성페니실린]에 의하여 분자로 결합하여 만들거나 생화학적 합성(예: 아미노산에서 분리된 페니실린)에 의하여 만든다.

합성에 의하여 재생되는 천연 항생물질(예: 클로람페니콜)은 이 호에 분류하며, 동일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천연 항생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합성제품(예: 티암페니콜)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 “유도체(derivative)”는 이 호의 화합물로부터 얻어질 수 있으며 그 기본적 화학 구조를 포함하여 어미 화합물(parent compound)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활성(active) 항생 물질 화합물을 말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항생물질 조제품(예: 건조와 표준화한 완전 균사)(**제2309호**)
- (b)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항생력이 대단히 작으며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것 (**구조에 따라 이 류의 앞 호에 분류**)
- (c) 퀴놀린카르복시산(quinolinecarboxylic acid) 유도체 · 니트로푸란(nitrofur) · 술폰아미드(sulphonamide)와 그 밖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항균력을 가지는 물질
- (d)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혼합한 항생물질의 혼합물(예: 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의 혼합물)(**제3003호**나 **제3004호**)
- (e) 항생물질의 제조과정에서 여과와 최초 단계의 추출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간 생성물로서 항생물질의 함량이 일반적으로 70% 이하의 것(**제3824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2941.10호

이 소호에는 모든 페니실린, 즉 분자들이 페닌(penin)이나 아미노-(4-카르복시-5,5-디메틸티아졸리딘-2-일)아세트산의 베타락탐의 6-아미노페니실란산의 골격구조를 함유하고 있으며 락탐고리의 아민기가 아미드 결합에 의해 유기산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활성(active) 화합물을 포함한다. 이들 유기산의 구조, 염의 구조나 티아졸리딘 고리의 카르복실기에 대한 그 밖의 치환(substitution)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페닌(penin)의 기본구조(골격구조)는 변성되거나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 소호는 특히 암피실린(INN) · 아목시실린(INN)과 텔람피실린(INN)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소호에서는 세팔로스포린[예: 세파졸린(INN) · 세파클로르(INN) · 세파마이신[예: 세폭시틴(INN)]] · 옥사세팸 · 페넴 · 카르바페넴 등과 같은 베타 - 락탐 고리(beta-lactam ring)를 함유하는 그 밖의 항생물질은 **제외한다**

소호 제2941.20호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유도체는 분자들이 화학구조 상의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골격 구조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활성(active) 항생 물질이다. 그 세 가지 구성요소들은 5-데옥실리소스에 연결된 스트렙티딘(streptidine)과 메틸글루코사민(methylglucosamine)을 말한다. 에스테르(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와 글리코사이드도 또한 유도체*로 간주한다.

이 소호는 특히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INN)과 스트렙토나지드(streptoniazid)(INN)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트렙티딘(streptidine)의 두 아미디노 그룹(amidino group)을 유지하지 않는 블루엔소마이신(INN)과 네오마이신(INN)과 같은 스트렙타민의 유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스트렙토마이신의 유도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호 제2941.30호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유도체는 분자들이 테트라사이클린 골격구조를 가졌으며 부분적으로 수소첨가된 4-디메틸아미노-나프타신-2-카르복시아미드를 함유하는 활성(active) 항생 물질이다. 에스테르도 또한 유도체*로 간주한다.

이 소호는 특히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INN), 에라바사이클린(INN)과 롤리테트라사이클린(INN)을 포함한다. 그러나, 아클라루비신(INN)과 독소루비신(INN)과 같은 루비신(rubicin) 형태의 안트라사이클린은 테트라사이클린 유도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호 제2941.40호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유도체는 분자들이 클로람페니콜 골격구조의 엔-(2-하이드록시-1-메틸-2-페닐)아세트아미드*를 함유하는 활성(active) 항생물질이다.

이 소호는 특히 티암페니콜(INN)과 플로르페니콜(INN)을 포함한다. 그러나, 세토펜페니콜(INN)은 항생적 활성이 없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소호 제2941.50호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유도체는 분자들이 에리트로마이신 골격구조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활성(active) 항생물질이다. 그 구성요소는 연결된 테소사민과 마이카로스(클래디노스)를 지닌 13-에틸-13-트리테카놀라이드이다. 에스테르도 또한 유도체*로 간주한다.

이 소호는 특히 클라리트로마이신(chlarithromycin)(INN)과 디리트로마이신(dirithromycin)(INN)을 포함한다. 그러나, 15-원자 중앙 고리를 함유하는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INN)과, 클래디노스나 마이카로스를 함유하지 않는 피크로마이신(picromycin)은 에리트로마이신의 유도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29.42 - 그 밖의 유기화합물

이 호에는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분류한다.

(1) **케텐(ketene)*** : 케톤(ketone)과 같이 카르보닐기($>C=O$)가 분자 중에 있는 특성이 있으나 카르보닐기가 인접하는 탄소 원자와 이중 결합에 의하여 연결된다(예: 케텐·디페닐케텐).

그러나 이 호에는 **제2932호**의 락톤화합물인 디케텐(diketene)은 **제외한다**.

(2) **삼플루오르화 붕소의 착화합물(complex)**[초산·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이나 페놀(phenol)을 포함한 것]*

(3) **이요드화디티몰(dithymlol di-iodide)**

알파벳 순서에 따라 유형별로 나열한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일람표

I.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1972년 개정의견서로 개정)에 따라 통제되는 마약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아세토르핀(INN)	2939.19	25333-77-1	4
염산 아세토르핀	2939.19	25333-78-2	4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2939.19	3861-72-1	2
염산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2939.19		2
아세틸펜타닐	2933.34	3258-84-2	1
아세틸메타돌(INN)	2922.19	509-74-0	1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	2933.34	101860-00-8	1
아세틸모르핀	2939.19		1
3-아세틸모르핀	2939.19		1
6-아세틸모르핀	2939.19	2784-73-8	1
아크릴로일펜타닐	2933.34	82003-75-6	1
AH-7921	2924.29		1
알펜타닐(INN)	2933.33	71195-58-9	1
염산 알펜타닐	2933.33	69049-06-5	1
알릴프로딘(INN)	2933.39	25384-17-2	1
염산 알릴프로딘	2933.39		1
알파아세틸메타돌(INN)	2922.19	17199-58-5	1
L-알파아세틸메타돌	2922.19		
염산 알파아세틸메타돌	2922.19		1
알파메프로딘(INN)	2933.39	468-51-9	1
알파메타돌(INN)	2922.19	17199-54-1	1
알파프로딘(INN)	2933.39	77-20-3	1
염산 알파프로딘	2933.39	561-78-4	1
아닐레리딘(INN)	2933.33	144-14-9	1
이(二)염산 아닐레리딘	2933.33	126-12-5	1
인산 아닐레리딘	2933.39	4268-37-5	1
벤제티딘(INN)	2933.39	3691-78-9	1
브롬화수소산 벤제티딘	2933.39		1
염산 벤제티딘	2933.39		1
벤조일모르핀	2939.19		1
벤질모르핀	2939.19	14297-87-1	1
염산 벤질모르핀	2939.19	630-86-4	1
메실산 벤질모르핀	2939.19		1
베타세틸메타돌(INN)	2922.19	17199-59-6	1
베타메프로딘(INN)	2933.39	468-50-8	1
베타메타돌(INN)	2922.19	17199-55-2	1
베타프로딘(INN)	2933.39	468-59-7	1
염산 베타프로딘	2933.39		1
베지트라미드(INN)	2933.33	15301-48-1	1
염산 베지트라미드	2933.33		1
부티르펜타닐	2933.34	1169-70-6	1
카나비스(대마)	1211.90		4
카나비스 추출물과 킱크제(tincture)	1302.19		
카나비스 기름	1302.19		
카나비스 수지	1301.90		
카펜타닐(INN)	2933.33	59708-52-0	1
클로니타젠(INN)	2933.99	3861-76-5	1
염산 클로니타젠	2933.99		1
메실산 클로니타젠	2933.99		1
코카인	1211.30		
코카인	2939.72	50-36-2	1
d-코카인	2939.72	478-73-9	1
벤조산 코카인	2939.72		1
붕산 코카인	2939.72		1
시트르산 코카인	2939.72		1
포름산 코카인	2939.72		1
코카인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72		1
브롬화수소산 코카인	2939.72		1

I.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1972년 개정의견서로 개정)에 따라 통제되는 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염산 코카인	2939.72	53-21-4	1
락트산 코카인	2939.72		1
질산 코카인	2939.72	5913-62-2	1
살리실산 코카인	2939.72	5913-64-4	1
황산 코카인	2939.72		1
주석(酒石)산 코카인	2939.72		1
코데인	2939.11	76-57-3	2
초산 코데인	2939.11		2
(다른) 바르비투르산 코데인	2939.11		2
바르비투르산 코데인	2939.11		2
장뇌(樟腦)술폰산 코데인	2939.11		2
시트르산 코데인	2939.11	5913-73-5	2
환(環)식 바르비투르산 코데인	2939.11		2
환(環)식 펜토바르비투르산 코데인	2939.11		2
코데인 6-글루쿠로니드	2939.19		2
브롬화수소산 코데인	2939.11	125-25-7	2
염산 코데인	2939.11	1422-07-7	2
코데인 하이드로아이오다이드	2939.11	125-26-8	2
코데인 메틸브로마이드	2939.19	125-27-9	2
페노바르비투르산 코데인	2939.11		2
인산 코데인	2939.11	52-28-8	2
레진산 코데인	3003.49		2
살리실산 코데인	2939.11		2
황산 코데인	2939.11	1420-53-7	2
코데인-엔-옥사이드	2939.19	3688-65-1	
염산 코데인-엔-옥사이드	2939.19		
코독심(INN)	2939.19	7125-76-0	1
양귀비줄기 농축물	1302.11		1
	2939.11		
시클로프로필펜타닐	2933.34	1169-68-2	1
데소모르핀(INN)	2939.19	427-00-9	4
브롬화수소산 데소모르핀	2939.19		4
염산 데소모르핀	2939.19		4
황산 데소모르핀	2939.19		4
덱스트로모라미드(INN)	2934.91	357-56-2	1
이(二)염산 덱스트로모라미드	2934.91		1
염산 덱스트로모라미드	2934.91		1
덱스트로모라미드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4.99	2922-44-3	1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	2922.14	469-62-5	2
염산 덱스트로프로폭시펜	2922.14	1639-60-7	2
나프실산염	2922.19	17140-78-2	2
레진산 덱스트로프로폭시펜	3003.90		2
다이암프로마이드(INN)	2924.29	552-25-0	1
황산 다이암프로마이드	2924.29		1
디에틸티암부텐(INN)	2934.99	86-14-6	1

I.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2년 개정의견서로 개정)에 따라 통제되는 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염산 디에틸티암부텐	2934.99	132-19-4	1
디페녹신(INN)	2933.33	28782-42-5	1
염산 디페녹신	2933.33	35607-36-4	1
디히드로코데인 (INN)	2939.11	125-28-0	2
염산 디히드로코데인	2939.11		2
디히드로코데인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5965-13-9	2
인산 디히드로코데인	2939.11	24204-13-5	2
레진산 디히드로코데인	3003.49		2
티오시안산 디히드로코데인	2939.11		2
디히드로에토르핀	2939.19		1
디히드로이소모르핀	2939.19		
디히드로이소모르핀 6-글루쿠로니드	2939.19		
디히드로모르핀	2939.19	509-60-4	2
디히드로모르핀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19		2
염산 디히드로모르핀	2939.19	1421-28-9	2
피크르산 디히드로모르핀	2939.19		2
디메녹사돌(INN)	2922.19	509-78-4	1
염산 디메녹사돌	2922.19	242-75-1	1
디메페프타놀(INN)	2922.19	545-90-4	1
염산 디메페프타놀	2922.19		1
디메틸티암부텐(INN)	2934.99	524-84-5	1
염산 디메틸티암부텐	2934.99		1
부티르산 디옥사페틸(INN)	2934.99	467-86-7	1
디옥사페틸 부티레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2934.99		1
디페녹실레이트(INN)	2933.33	915-30-0	1
염산 디페녹실레이트	2933.33	3810-80-8	1
디피파논(INN)	2933.33	467-83-4	1
브롬화수소산 디피파논	2933.33		1
염산 디피파논	2933.33	75783-06-1	1
드로테바놀(INN)	2933.49	466112	1
엑고닌, 그 에스테르와 유도체 (엑고닌과 코카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	2939.72	481-37-8	1
엑고닌 벤조일메틸 에스테르	2939.72		1
엑고닌 벤조일프로필 에스테르	2939.72		1
엑고닌 시나모일메틸 에스테르	2939.72		1
엑고닌 2,6-디메틸-벤조일메틸 에스테르	2939.72		1
염산 엑고닌	2939.72		1
엑고닌 <i>m</i> -히드록시벤조일 에스테르	2939.72		1
엑고닌 메틸 에스테르	2939.72		1
염산 엑고닌 메틸에스테르	2939.72		1
엑고닌 페닐아세틸-메틸 에스테르	2939.72		1
에틸메틸티암부텐(INN)	2934.99	441-61-2	1
염산 에틸메틸티암부텐	2934.99		1
에틸모르핀	2939.11	76-58-4	2
장뇌(樟腦)술폰산 에틸모르핀	2939.11		2
브롬화수소산 에틸모르핀	2939.11		2
염산 에틸모르핀	2939.11	125-30-4	2
에틸모르핀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19		2
페노바르비투르산 에틸모르핀	2939.11		2
에토니타젠(INN)	2933.99	911-65-9	1
염산 에토니타젠	2933.99		1
에토르핀(INN)	2939.11	14521-96-1	4

I.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1972년 개정의견서로 개정)에 따라 통제되는 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발표 번호
염산 에토르핀	2939.11	13764-49-3	4
에토르핀 3-메틸 에테르	2939.19		4
에톡세리딘(INN)	2933.39	469-82-9	1
염산 에톡세리딘	2933.39		1
펜타닐(INN)	2933.33	437-38-7	1
시트르산 펜타닐	2933.33	990-73-8	1
p-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2933.34	244195-31-1	1
p-플루오로펜타닐	2933.34		4
염산 p-플루오로펜타닐	2933.34		4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	2933.34	244195-32-2	1
푸라닐펜타닐	2934.92	101345-66-8	1
푸레티딘(INN)	2934.99	2385-81-1	1
브롬화수소산 푸레티딘	2934.99		1
푸레티딘 메틸아이오다이드	2934.99		1
피크르산 프레티딘	2934.99		1
헤로인	2939.11	561-27-3	4
염산 헤로인	2939.11	1502-95-0	4
헤로인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19		4
히드로코돈(INN)	2939.11	125-29-1	1
시트르산 히드로코돈	2939.11		1
히드로코돈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11		1
염산 히드로코돈	2939.11	25968-91-6	1
히드로코돈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143-71-5	1
히드로코돈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19		1
인산 히드로코돈	2939.11	34366-67-1	1
레진산 히드로코돈	3003.49		1
테레프탈산 히드로코돈	2939.11		1
히드로모르피놀(INN)	2939.19	2183-56-4	1
염산 히드로모르피놀	2939.19		1
히드로모르피놀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9		1
히드로모르핀(INN)	2939.11	466-99-9	1
히드로모르핀 3-글루쿠로니드	2939.11		1
염산 히드로모르핀	2939.11	71-68-1	1
황산 히드로모르핀	2939.11		1
테레프탈산 히드로모르핀	2939.11		1
β-히드록시펜타닐	2933.34		4
염산 β-히드록시펜타닐	2933.34		4
(+)-s/s-β-히드록시-3-m-메틸펜타닐	2933.34		4
β-히드록시-3-메틸펜타닐	2933.34		4
염산 β-히드록시-3-메틸펜타닐	2933.34		4
히드록시페티딘(INN)	2933.39	468-56-4	1
염산 히드록시페티딘	2933.39		1
이소메타돈(INN)	2922.39	466-40-0	1
α-이소메타돈	2922.39		
l-이소메타돈	2922.39		
브롬화수소산 이소메타돈	2922.39		1
염산 이소메타돈	2922.39		1
케토베미돈(INN)	2933.33	469-79-4	4
염산 케토베미돈	2933.33	5965-49-1	4
레바세틸메타돌(INN)	2922.19	34433-66-4	1
레보메토르판(INN)(*)	2933.49	125-70-2	1
브롬화수소산 레보메토르판	2933.49		1
레보메토르판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9		1
레보모라미드(INN)	2934.99	1375814	1
이(二)염산 레보모라미드	2934.99		1
레보페나실모르판(INN)	2933.49	10061-32-2	1
염산 레보페나실모르판	2933.49		1
메틸술폰산 레보페나실모르판	2933.49		1
레보프로폭시펜(INN)	2922.19	2338-37-6	1
레보르파놀(INN)**	2933.41	77-07-6	1

(*) 구체적으로, 텍스트로메토르판(INN) ((+)-3-메톡시-엔-메틸모르피난)은 이 목록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텍스트로판(INN) ((+)-3-히드록시-엔-메틸모르피난)은 이 목록에서 제외된다.

I.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2년 개정의견서로 개정)에 따라 통제되는 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레보르파놀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1	125-72-4	1
염산 레보르파놀	2933.41		1
메타조신(INN)	2933.39	3734-52-9	1
브롬화수소산 메타조신	2933.39		1
염산 메타조신	2933.39		1
l-메타돌	2922.19		
메타돈(INN)	2922.31	76-99-3	1
α-메타돈	2922.31		
l-메타돈	2922.31		1
브롬화수소산 메타돈	2922.31		1
염산 메타돈	2922.31	1095-90-5	1
메타돈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22.31		1
염산 α-메타돈	2922.31		
염산 l-메타돈	2922.31		
l-메타돈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22.31		1
메타돈(INN) 중간체 4-시아노-2-디메틸아미노- 4,4-디페닐부탄 또는 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4-시아노부탄	2926.30		1
메톡시아세틸펜타닐	2933.34	101345-67-9	1
메틸데소르핀(INN)	2939.19	16008-36-9	1
염산 메틸데소르핀	2939.19		1
메틸디히드로모르핀(INN)	2939.19	509-56-8	1
3-메틸펜타닐	2933.34		4
염산 3-메틸펜타닐	2933.34		4
α-메틸펜타닐	2933.34		4
염산 α-메틸펜타닐	2933.34		4
α-메틸티오펜타닐	2934.92		1
염산 α-메틸티오펜타닐	2934.92		1
3-메틸티오펜타닐	2934.92		4
염산 3-메틸티오펜타닐	2934.92		4
(+)-s/s-3-메틸티오펜타닐	2934.92		4
(+)-s/s-3-메틸티오펜타닐-염산염	2934.92		
메토폰(INN)	2939.19	143-52-2	1
염산 메토폰	2939.19		1
모라미드중간체	2934.99		1
모르페리딘(INN)	2934.99	469-81-8	1
이(二)염산 모르페리딘	2934.99		1
피크르산 모르페리딘	2934.99		1
모르핀	2939.11	57-27-2	1
초산 모르핀	2939.11	596-15-6	1
시트르산 모르핀	2939.11		1
모르핀 3,6-디글루쿠로니드	2939.19		1
모르핀 디메틸 에테르	2939.19		
글루콘산 모르핀	2939.19		1
모르핀 3-글루쿠로니드	2939.19		1
모르핀 6-글루쿠로니드	2939.19		1
모르핀 3-β-D-글루쿠로니드	2939.19		1
모르핀 6-β-D-글루쿠로니드	2939.19		1
모르핀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11		1
브롬화수소산모르핀	2939.11	630-81-9	1
염산 모르핀	2939.11	52-26-6	1
하이포아인산 모르핀	2939.11		1
이소부티르산 모르핀	2939.11		1
락트산 모르핀	2939.11		1
메콘산 모르핀	2939.11		1
모르핀 메틸브로마이드	2939.19		1
모르핀 염화메틸	2939.19		1
모르핀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19		1
메틸술폰산 모르핀	2939.11		1
모르핀 메토브로마이드	2939.19		1

I.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2년 개정의견서로 개정)에 따라 통제되는 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모르핀 무케이트	2939.11		1
질산 모르핀	2939.11	596-16-7	1
페닐프로피온산 모르핀	2939.11		1
인산 모르핀	2939.11		1
프탈산 모르핀	2939.11		1
스테아르산 모르핀	2939.11		1
황산 모르핀	2939.11	64-31-3	1
주석(酒石)산 모르핀	2939.11	302-31-8	1
발레르산 모르핀	2939.11		1
모르핀-엔-옥사이드	2939.19	639-46-3	1
퀴닉산 모르핀-엔-옥사이드	2939.19		1
MPPP	2933.39		4
염산 MPPP	2933.39		4
MT-45	2933.59		1
미로핀(INN)	2939.19	467-18-5	1
염산 미로핀	2939.19		1
니코코딘(INN)	2939.19	3688-66-2	2
염산 니코코딘	2939.19		2
니코디코딘(INN)	2939.19	808-24-2	2
니코모르핀(INN)	2939.11	639-48-5	1
염산 니코모르핀	2939.11		1
노라시메타돌(INN)	2922.19	1477-39-0	1
글루콘산노라시메타돌	2922.19		1
염산 노라시메타돌	2922.19		1
노르코데인(INN)	2939.19	467-15-2	2
초산 노르코데인	2939.19		2
노르코데인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19		2
염산 노르코데인	2939.19	14648-14-7	2
질산 노르코데인	2939.19		2
노르코데인 염화백금	2843.90		2
황산 노르코데인	2939.19		2
노르레보르파놀(INN)	2933.49	1531-12-0	1
브롬화수소산 노르레보르파놀	2933.49		1
염산 노르레보르파놀	2933.49		1
노르메타돈(INN)	2922.31	467-85-6	1
노르메타돈2,6-디-3차-부틸나프탈렌디술포네이트	2922.31		1
브롬화수소산 노르메타돈	2922.31		1
염산 노르메타돈	2922.31	847-84-7	1
노르메타돈 메틸아이드	2922.39		1
옥살산노르메타돈	2922.31		1
피크르산 노르메타돈	2922.31		1
노르메타돈(INN) 중간체	2926.90		1
노르모르핀(INN)	2939.19	466-97-7	1
염산 노르모르핀	2939.19		1
노르피파논(INN)	2933.39	561-48-8	1
브롬화수소산 노르피파논	2933.39		1
염산 노르피파논	2933.39		1
옥펜타닐(INN)	2933.34	101343-69-5	1
아편	1302.11		1

I.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2년 개정의견서로 개정)에 따라 통제되는 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아편, 혼합 알칼로이드	1302.11(*) 2939.11(**)		
아편, 조제한 것	1302.19 2939.11		
o-플루오로펜타닐	2933.34	910616-29-4	1
오리파빈	2939.19		1
염산 오리파빈	2939.19		1
옥시코돈(INN)	2939.11	76-42-6	1
장뇌(樟腦)술폰산 옥시코돈	2939.11		1
염산 옥시코돈	2939.11	124-90-3	1
옥시코돈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1
펙트산 옥시코돈	2939.11		1
페닐프로피온산 옥시코돈	2939.11		1
인산 옥시코돈	2939.11		1
테레프탈산 옥시코돈	2939.11		1
옥시모르폰(INN)	2939.11	76-41-5	1
염산 옥시모르폰	2939.11	357-07-3	1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1211.90		
PEPAP	2933.39		4
염산PEPAP	2933.39		4
페티딘(INN)	2933.33	57-42-1	1
염산 페티딘	2933.33	50-13-5	1
페티딘(INN) 중간체 A	2933.33		1
페티딘(INN) 중간체 B	2933.39		1
브롬화수소산 페티딘 중간체 B	2933.39		1
염산 페티딘 중간체 B	2933.39		1
페티딘(INN) 중간체 C	2933.39		1
페나독손(INN)	2934.99	467-84-5	1
염산 페나독손	2934.99	545-91-5	1
페남프로마이드(INN)	2933.39	129-83-9	1
염산 페남프로마이드	2933.39		1
페나조신(INN)	2933.39	127-35-5	1
브롬화수소산 페나조신	2933.39		1
염산 페나조신	2933.39	7303-75-5	1
메실산 페나조신	2933.39		1
페노모르판(INN)	2933.49	468-07-5	1
브롬화수소산 페노모르판	2933.49		1
페노모르판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9		1
페노모르판 메틸브로마이드	2933.49		1
페노페리딘(INN)	2933.33	562-26-5	1
염산 페노페리딘	2933.33	3627-49-4	1
폴코딘(INN)	2939.11	509-67-1	2
폴코딘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2
시트르산 폴코딘	2939.11		2
구아리아콜술폰산 폴코딘	2939.11		2
염산 폴코딘	2939.11		2
페닐초산 폴코딘	2939.11		2

(*) 다른 물질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천연 혼합물로서, 알칼로이드 이외의 성분이 충분히 제거되고 다른 물질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I.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1972년 개정의견서로 개정)에 따라 통제되는 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인산 폴코딘	2939.11		2
술폴산 폴코딘	2939.11		2
주석(酒石)산 폴코딘	2939.11	1997818	2
피미노딘(INN)	2933.39	13495-09-5	1
이(二)염산 피미노딘	2933.39		1
에실산 피미노딘	2933.39	7081-52-9	1
파리트라마이드(INN)	2933.33	302-41-0	1
양귀비 줄기	1211.40		
프로헵타진(INN)	2933.99	77-14-5	1
시트르산 프로헵타진	2933.99		1
브롬화수소산 프로헵타진	2933.99		1
염산 프로헵타진	2933.99		1
프로페리딘(INN)	2933.39	561-76-2	1
염산 프로페리딘	2933.39		1
프로피람(INN)	2933.33	15686-91-6	2
푸마르산 프로피람	2933.33		2
라세메토르판(INN)	2933.49	510-53-2	1
브롬화수소산 라세메토르판	2933.49		1
라세메토르판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9		1
라세모라미드(INN)	2934.99	545-59-5	1
이(二)염산 라세모라미드	2934.99		1
라세모라미드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4.99		1
주석(酒石)산 라세모라미드	2934.99		1
라세모르판(INN)	2933.49	297-90-5	1
브롬화수소산 라세모르판	2933.49		1
염산 라세모르판	2933.49		1
라세모르판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9		1
레미펜타닐(INN)	2933.33	132875-61-7	1
염산 레미펜타닐	2933.33		1
서펜타닐(INN)	2934.91	56030-54-7	1
시트르산 서펜타닐	2934.91		1
테바콘(INN)	2939.11	466-90-0	1
염산 테바콘	2939.11	20236-82-2	1
테바인	2939.11	115-37-7	1
염산 테바인	2939.11		1
테바인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1
옥살산 테바인	2939.11		1
살리실산 테바인	2939.11		1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	2934.92		1
테바콘(INN)	2939.11		1
테바인	2939.11		1
티오펜타닐	2934.92	1165-22-6	4
초산 티오펜타닐	2934.92		1
염산 티오펜타닐	2934.92		4
틸리딘(INN)	2922.44	20380-58-9	1
염산 틸리딘	2922.44	27107-79-5	1
트리메페리딘(INN)	2933.33	64-39-1	1
염산 트리메페리딘	2933.33	125-80-4	1
U-47700	2924.29		1

II.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향정신성 물질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에이비-크미나카	2933.99		2
AB-피나카	2933.99		2
알로바르비탈(INN)	2933.53	52-43-7	4
알로바르비탈 아미노페나존	2933.54		4
알프라졸람(INN)	2933.91	28981-97-7	4

II.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향정신성 물질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AM-2201; JWH-2201	2933.99		2
암페프라몬(INN)	2922.31	90-84-6	4
글루탐산 암페프라몬	2922.42		4
염산 암페프라몬	2922.31	134-80-5	4
레진산 암페프라몬	3003.90		4
암페타민(INN)	2921.46	300-62-9	2
아세틸살리실산 암페타민	2921.46		2
아디프산 암페타민	2921.46		2
암페타민 p-아미노페닐아세테이트	2922.49		2
아스파르트산 암페타민	2922.49		2
암페타민 p-클로로-페녹시초산염	2921.46		2
염산 암페타민	2921.46		2
암페타민 수소 주석(酒石)산염(중(重)주석산염)	2921.46		2
펜토바르비투르산 암페타민	2933.54		2
인산 암페타민	2921.46	139-10-6	2
레진산 암페타민	3003.90		2
황산 암페타민	2921.46	60-13-9	2
탄닌산 암페타민	3201.90		2
주석(酒石)산 암페타민	2921.46		2
아미넵틴(INN)	2922.49		2
염산 아미넵틴	2922.49		2
아미노렉스(INN)	2934.91	2207-50-3	4
푸마르산 아미노렉스	2934.91		4
염산 아미노렉스	2934.91		4
아모바르비탈(INN)	2933.53	57-43-2	3
레진산 아모바르비탈	3003.90		3
아모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64-43-7	3
바르비탈(INN)	2933.53	57-44-3	4
바르비탈 칼슘	2933.53		4
바르비탈 마그네슘	2933.53		4
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144-02-5	4
벤즈페타민(INN)	2921.46	156-08-1	4
염산 벤즈페타민	2921.46	5411-22-3	4
엔-벤질피페라진; 벤질피페라진; BZP	2933.59		2
이(二)염산 엔-벤질피페라진	2933.59		2
염산 엔-벤질피페라진	2933.59		2
25B-NBOMe; 2C-B-NBOMe	2922.29		1
염산25B-NBOMe	2922.29		1
브롤암페타민(INN) (DOB)	2922.29	64638-07-9	1
염산 브롤암페타민(DOB)	2922.29		1
브로마제팜(INN)	2933.33	1812-30-2	4
브로티졸람(INN)	2934.91	57801-81-7	4
부프레노르핀(INN)	2939.11	52485-79-7	3
염산 부프레노르핀	2939.11	53152-21-9	3
부프레노르핀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3
황산 부프레노르핀	2939.11		3
부탈비탈(INN)	2933.53	77-26-9	3
부토바르비탈	2933.53	77-28-1	4
카마제팜(INN)	2933.91	36104-80-0	4
캐친(INN)	2939.43	492-39-7	3
캐친 염산염	2939.43	2153-98-2	3
페노바르비투르산 캐친	2939.43		3
레진산 캐친	3003.49		3
황산 캐친	2939.43		3
카티논(INN)	2939.79	71031-15-7	1
염산 카티논	2939.79		1
2C-B	2922.29		2
염산2C-B	2922.29		2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2933.91	58-25-3	4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디부네이트	2933.91		4
염산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2933.91	438-41-5	4

II.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향정신성 물질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클로바잠(INN)	2933.72	22316-47-8	4
클로나제팜(INN)	2933.91	1622-61-3	4
클로라제페이트	2933.91		4
클로라제페이트 이(二)칼륨	2933.91	57109-90-7	4
클로라제페이트 일(一)칼륨	2933.91	5991-71-9	4
클룩사졸람(INN)	2934.91	24166-13-0	4
25C-NBOMe; 2C-C-NBOMe	2922.29		1
염산25C-NBOMe	2922.29		1
시클로바르비탈(INN)	2933.53	52-31-3	3
시클로바르비탈 칼슘	2933.53	5897-20-1	3
델로라제팜(INN)	2933.91	2894-67-9	4
DET	2939.79	61-51-8	1
염산 DET	2939.79		1
텍스암페타민(INN)	2921.46	51-64-9	2
아디프산 텍스암페타민	2921.46		2
텍스암페타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3912.31		2
염산 텍스암페타민	2921.46	405-41-4	2
텍스암페타민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21.46		2
텍스암페타민 펜토-바르비투르산염	2933.54		2
인산 텍스암페타민	2921.46	7528-00-9	2
레진산 텍스암페타민	3003.90		2
사카린산 텍스암페타민	2921.49		2
황산 텍스암페타민	2921.46	51-63-8	2
탄닌산 텍스암페타민	3201.90		2
디아제팜(INN)	2933.91	439-14-5	4
DMA	2922.29		1
염산 DMA	2922.29		1
4,4'-DMAR; 4,4'-디메틸아미노렉스	2934.99		2
DMHP	2932.99		1
DMT	2939.79	61-50-7	1
염산 DMT	2939.79		1
DMT 메틸아يو다이드	2939.79		1
DOET	2922.29		1
염산 DOET	2922.29		1
르로나비놀(INN)	2932.95		2
에스타졸람(INN)	2933.91	29975-16-4	4
에트클로르비놀(INN)	2905.51	113-18-8	4
에티나메이트(INN)	2924.24	126-52-3	4
에틸로플라제페이트(INN)	2933.91	29177-84-2	4
에틸페니데이트; EPH	2933.39		2
에틸론	2932.99		2
엔-에틸MDA	2932.99		1
염산 엔-에틸MDA	2932.99		1
에티시클리딘(PCE)(INN)	2921.49	2201-15-2	1
염산 에티시클리딘(PCE)	2921.49		1
에틸암페타민(INN)	2921.46	457-87-4	4
염산 에틸암페타민	2921.46		4
에트립타민(INN)	2933.99		1
초산 에트립타민	2933.99		1
염산 에트립타민	2933.99		1
5F-ADB; 5F-MDMB-PINACA	2933.99		2
5F-APINACA; 5F-AKB-48	2933.99		2
5F-PB-22	2933.49		2
펜캄파민(INN)	2921.46	1209-98-9	4
염산 펜캄파민	2921.46	2240-14-4	4
페네틸린(INN)	2939.51	670800	2
염산 페네틸린	2939.51	1892-80-4	2
펜프로포렉스(INN)	2926.30	15686-61-0	4
디페닐초산 펜프로포렉스	2926.30		4
염산 펜프로포렉스	2926.30	18305-29-8	4
레진산 펜프로포렉스	3003.90		4
플루디아제팜(INN)	2933.91	3900-31-0	4
플루니트라제팜(INN)	2933.91	1622-62-4	4
4-플루오로암페타민; 4-FA	2921.49		2
플루라제팜(INN)	2933.91	17617-23-1	4
이(二)염산 플루라제팜	2933.91	1172-18-5	4
염산 플루라제팜	2933.91	36105-20-1	4

II.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향정신성 물질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GHB	2918.19		2
GHB 나트륨	2918.19		2
글루테티마이드(INN)	2925.12	77-21-4	3
할라제팜(INN)	2933.91	23092-17-3	4
할록사졸람(INN)	2934.91	59128-97-1	4
엔-히드록시MDA	2932.99		1
염산 엔-히드록시MDA	2932.99		1
25I-NBOMe; 2C-I-NBOMe	2922.29		1
염산 25I-NBOMe	2922.29		1
JWH-018; AM-678	2933.99		2
케타졸람(INN)	2934.91	27223-35-4	4
레페타민(INN)	2921.46	7262-75-1	4
염산 레페타민	2921.46	14148-99-3	4
레밤페타민(INN)	2921.46	156-34-3	2
알긴산 레밤페타민	3913.10		2
숙신산 레밤페타민	2921.49	5634-40-2	2
황산 레밤페타민	2921.49		2
레보2022년본타민	2939.45		2
염산 레보2022년본타민	2939.45		2
로프라졸람(INN)	2933.55	61197-73-7	4
메실산 로프라졸람	2933.55		4
메틸술폰산 로프라졸람	2933.55		4
로라제팜(INN)	2933.91	846-49-1	4
초산 로라제팜	2933.91		4
메실산 로라제팜	2933.91		4
피발산 로라제팜	2933.91		4
로르메타제팜(INN)	2933.91	848-75-9	4
리세르가이드(INN), LSD, LSD-25	2939.69	50-37-3	1
주석(酒石)산 (+)-리세르가이드	2939.69		1
마진돌(INN)	2933.91	22232-71-9	4
MDE, 엔-에틸MDA, MDEA	2932.99		1
MDMA	2932.99		1
염산 MDMA	2932.99		1
MDMB-크미카	2933.99		2
MDPV	2934.99		2
염산 MDPV	2934.99		2
메클로쿠알론(INN)	2933.55	340-57-8	2
염산 메클로쿠알론	2933.55		2
메다제팜(INN)	2933.91	364854	4
메다제팜 디부네이트	2933.91		4
염산 메다제팜	2933.91		4
메페노렉스(INN)	2921.46	17243-57-1	4
염산 메페노렉스	2921.46		4
메페드론	2939.79		2
염산 메페드론	2939.79		2
메프로바메이트(INN)	2924.11	57-53-4	4
메스칼린	2939.79	1954-04-06	1
메스칼린 염화금	2843.30		1
염산 메스칼린	2939.79	832-92-8	1
피크르산 메스칼린	2939.79		1
메스칼린 염화백금	2843.90		1
황산 메스칼린	2939.79	1152-76-7	1
메소카브(INN)	2934.71	34262-84-5	4
메탐페타민(INN)	2939.45	537-46-2	2
염산 메탐페타민	2939.45	51-57-0	2
메탐페타민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45		2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라셈체)	2939.45	7632-10-2	2
염산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라셈체)	2939.45		2
황산 메탐페타민	2939.45		2
메타쿠알론(INN)	2933.55	72-44-6	2
염산 메타쿠알론	2933.55	340-56-7	2
레진산 메타쿠알론	3003.90		2
메스카티논	2939.79		1
염산 메스카티논	2939.79		1
메티오프로파민; MPA	2934.99		2

II.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향정신성 물질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메톡세타민; MXE	2922.50		2
염산 메톡세타민(MXE)	2922.50		2
메틸아미노렉스	2934.99		1
염산 메틸아미노렉스	2934.99		1
4-메틸에스카타논; 4-MEC	2939.79		2
메틸론; 베타-케토-MDMA	2932.99		2
염산 메틸론	2932.99		2
메틸페니데이트(INN)	2933.33	113-45-1	2
염산 메틸페니데이트	2933.33	298-59-9	2
메틸페노바르비탈(INN)	2933.53	115-38-8	4
메틸페노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4
메티프릴론(INN)	2933.72	125-64-4	4
미다졸람(INN)	2933.91	59467-70-8	4
염산 미다졸람	2933.91		4
말레산 미다졸람	2933.91		4
MMDA	2932.99		1
염산 MMDA	2932.99		1
4-MTA	2930.90		1
염산 4-MTA	2930.90		1
니메타제팜(INN)	2933.91	2011-67-8	4
니트라제팜(INN)	2933.91	146-22-5	4
노르다제팜(INN)	2933.91	1088-11-5	4
옥사제팜(INN)	2933.91	604-75-1	4
초산 옥사제팜	2933.91		4
해미숙신산 옥사제팜	2933.91		4
숙신산 옥사제팜	2933.91		4
발프로산 옥사제팜	2933.91		4
옥사졸람(INN)	2934.91	24143-17-7	4
파라헥실	2932.99		1
페몰린(INN)	2934.91	2152-34-3	4
페몰린 구리	2934.91		4
페몰린 철	2934.91		4
페몰린 마그네슘	2934.91		4
페몰린 니켈	2934.91		4
펜타조신(INN)	2933.33	359-83-1	3
염산 펜타조신	2933.33		3
락트산 펜타조신	2933.33	17146-95-1	3
펜테드론	2939.79		2
펜토바르비탈(INN)	2933.53	76-74-4	3
펜토바르비탈 칼슘	2933.53	7563-42-0	3
펜토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57-33-0	3
페나제팜	2933.99		4
펜사이클리딘(INN) (PCP)	2933.33	77-10-1	2
브롬화수소산 펜사이클리딘	2933.33		2
염산 펜사이클리딘	2933.33	956-90-1	2
펜디메트라진(INN)	2934.91	634-03-7	4
염산 펜디메트라진	2934.91		4
펜디메트라진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4.91		4
파모산 펜디메트라진	2934.91		4
펜메트라진(INN)	2934.91	134-49-6	2
염산 펜메트라진	2934.91	1707-14-8	2
펜메트라진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4.91		2
황산펜메트라진	2934.91		2
테오클산 펜메트라진	2939.59	13931-75-4	2
페노바르비탈(INN)	2933.53	50-06-6	4
페노바르비탈 암모늄	2933.53		4
페노바르비탈 칼슘	2933.53	58766-25-9	4
페노바르비탈 디에틸아민	2933.53		4
페노바르비탈 디에틸아미노에탄올	2933.53		4
페노바르비탈 리시딘	2933.53		4
페노바르비탈 마그네슘	2933.53		4
페노바르비탈 프로필헥세드린	2933.53		4
페노바르비탈 퀴니딘	2939.20		4
페노바르비탈 나트륨, 마그네슘	2933.53		4
페노바르비탈 나트륨(INN)	2933.53	57-30-7	4
페노바르비탈 스파르테인	2939.79		4

II.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향정신성 물질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페노바르비탈 테트라메틸암모늄	2933.53		4
페노바르비탈 요힘빈	2939.79		4
펜테르민(INN)	2921.46	122-09-8	4
염산 펜테르민	2921.46	1197-21-3	4
레진산 펜테르민	3003.90		4
피나제팜(INN)	2933.91	52463-83-9	4
피프라드롤(INN)	2933.33	467-60-7	4
염산 피프라드롤	2933.33	71-78-3	4
PMA	2922.29		1
염산 PMA	2922.29		1
PMMA	2922.29		1
염산 PMMA	2922.29		1
프라제팜(INN)	2933.91	2955-38-6	4
사일로신, 사일로트신	2939.79		1
염산 사일로신, 사일로트신	2939.79		1
사일로시빈(INN)	2939.79	520-52-5	1
염산 사일로시빈	2939.79		1
α-PVP	2939.79		2
염산 α-PVP	2939.79		2
피로발레론(INN)	2933.91	3563-49-3	4
염산 피로발레론	2933.91	1147-62-2	4
롤리사이클리딘(INN) (PHP, PCPY)	2933.99	2201-39-0	1
섹부타르비탈(INN)	2933.53	125-40-6	4
섹부타르비탈나트륨	2933.53		4
세코바르비탈(INN)	2933.53	76-73-3	2
세코바르비탈 칼슘	2933.53		2
레진산 세코바르비탈	3003.90		2
세코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309-43-3	2
STP, DOM	2922.29	15588-95-1	1
염산 STP, DOM	2922.29		1
테마제팜(INN)	2933.91	846-50-4	4
텐암페타민(INN) (MDA)	2932.99	51497-09-7	1
염산 텐암페타민(MDA)	2932.99		1
테노사이클리딘(INN)	2934.99	21500-98-1	1
염산 테노사이클리딘	2934.99		1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모든 이성체	2932.95	다양	2
d-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2932.95	26514	2
테트라제팜(INN)	2933.91	10379-14-3	4
TMA	2922.29		1
염산 TMA	2922.29		1
트리아졸람(INN)	2933.91	28911-01-5	4
UR-144	2933.99		2
비닐비탈(INN)	2933.53	2430-49-1	4
XLR-11	2933.99		2
지페프롤(INN)	2933.55	34758-83-3	2
이(二)염산 지페프롤	2933.55		2
졸피뎀(INN)	2933.99		4
헤미주석(酒石)산 졸피뎀	2933.99		4

III. 선구물질(先驅物質)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무수(無水) 초산	2915.24	108-24-7
아세톤	2914.11	67-64-1
엔-아세틸안스라닐릭산	2924.23	89-52-1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APAAN)	2926.40	4468-48-8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ANPP)	2933.36	21409-26-7
안스라닐릭산	2922.43	118-92-3
부타논(에틸메틸케톤)	2914.12	78-93-3
디에틸 에테르	2909.11	60-29-7
에페드린	2939.41	299-42-3
염산 에페드린	2939.41	50-98-6
질산 에페드린	2939.41	81012-98-8
황산 에페드린	2939.41	134-72-5
엘고메트린(INN)	2939.61	60-79-7
염산 엘고메트린	2939.61	74283-21-9
엘고메트린 수소 말레산염	2939.61	129-51-1
옥살산 엘고메트린	2939.61	
주석(酒石)산 엘고메트린	2939.61	129-50-0
엘고타민(INN)	2939.62	113-15-5
염산 엘고타민	2939.62	
숙신산 엘고타민	2939.62	
주석(酒石)산 엘고타민	2939.62	379-79-3
염화수소(염산)	2806.10	7647-01-0
이소사프롤	2932.91	120-58-1
리세르그산	2939.63	82-58-6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	2932.92	4676-39-5
놀에페드린	2939.44	14838-15-4
염산 놀에페드린	2939.44	154-41-6
엔-페네틸-4-피페리딘(NPP)	2933.37	39742-60-4
페닐아세톤(벤질메틸케톤, 페닐프로판-2-온)	2914.31	103-79-7
페닐아세트산	2916.34	103-82-2
피페리딘	2933.32	110-89-4
피페리딘 염화금	2843.30	
염산 피페리딘	2933.32	6091-44-7
피페리딘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32	6091-46-9
질산 피페리딘	2933.32	6091-45-8
인산 피페리딘	2933.32	
피크르산 피페리딘	2933.32	6091-49-2
피페리딘 염화백금	2843.90	
티오시안산 피페리딘	2933.32	22205-64-7
피페로날	2932.93	120-57-0
과망간산 칼륨	2841.61	7722-64-7
슈도에페드린(INN)	2939.42	90-82-4
염산 슈도에페드린	2939.42	345-78-8
황산 슈도에페드린	2939.42	7460-12-0
사프롤	2932.94	94-59-7
황산	2807.00	7664-93-9
틀루엔	2902.30	108-88-3

특정 통제 물질의 불법적인 생산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구물질과 필수 화학물질 목록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 화학물질 (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헤로인 또는 디아세틸-모르핀 (2939.11)	(i) 코데인 (P) (2939.11)	코디셉트 코두셉트 7,8-디데히드로-4,5-에폭시-3- 메톡시-17-메틸모르피난-6-올 메틸모르핀 3-O-메틸모르핀 모르피난-6-올, 7,8-디데히드로 -4,5-에폭시-3-메톡시-17-메틸 모르핀, 3-메틸 에테르 모르핀 모노메틸 에테르	76-57-3 52-28-8 (S)
	(ii) 모르핀 (P) (2939.11)	7,8-디데히드로-4,5-에폭시-17- 메틸-포르피난-3,6-디올 모르피난-3,6-디올, 7,8-디데히드로-4,5-에폭시-17- 메틸	57-27-2 (무수(無水)) 6009-81-0 (일(-)수화물)
	(iii) 무수(無水)초산 (E) (2915.24)	아세트안하이드라이드 아세트 옥사이드 아세틸 옥사이드 에타니오익 안하이드라이드	108-24-7
	(iv) 염화 아세틸 (E) (2915.90)	에타니오닐 클로라이드	75-36-5
	(v) 디아세트산 에틸리텐 (E) (2915.39)	아세트산, 에틸리텐 에스테르 1,1-디아세톡시에탄	542-10-9
코카인 또는 메틸 벤조일-엑고닌 (2939.72)	(i) 아세톤 (E) (2914.11)	2-프로판논 디메틸케톤 β-케토프로판 피로아세트 에테르 프로판-2-온	67-64-1
	(ii) 디에틸에테르 (E) (2909.11)	에틸 에테르 에테르 에톡시에탄 산화 에틸 산화 디에틸 에테르 마취제	60-29-7
	(iii) 메틸에틸케톤 (MEK) (E) (2914.12)	부타논	78-93-3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 화학물질 (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 등록번호 요약서비스(CAS)
리세르가이드 (INN) 또는 LSD 또는 엔,엔-디에틸-리세르그아 마이드 (2939.69)	(i) 에르고타민 (INN) (P) (2939.62)	5'-벤질-12'-히드록시- 2'- 메틸에르코나만-3',6',18-트리온 에르고타민-3',6',18-트리온, 12'-히드록시-2'-메틸-5'- (페닐메틸) 12'-히드록시-2'-메틸-5'-(페 닐메틸) 에르고타민-3',6', 18- 트리온 인돌로[4,3-fg]퀴놀린, 에르고타민-3',6',18-트리온 유도체 8H-옥사졸로[3,2,-a]- 피롤로[2,1-c]피라진, 에르고타민-3',6',18-트리온 유도체 엔-(5-벤질-10b-히드록시- 2-메틸-3,6-디옥소피하이드 로옥사졸로-[3,2-a]피롤로 [2,1-c]- 피라진-2-일)- D-리세르그아마이드 에르감 에르게이트 에르고마르 에르고스타트 중주석(重酒石)산 에르고타민 에르고타민, 주석(酒石)산염 (2 : 1) (S) 에르고타민니 타르트라스 에르고타민-3',6',18-트리온, 12'-히드록시-2'-메틸-5'-(페닐- 메틸)-, -2,3 디히드록시- 부탄디오네이트 (2 : 1) (S) 에르고타르트레이트 에틴 엑스미그라 페메르긴 주석(酒石)산 고타민 기네르겐 린그레인 린그란 메디할러 에르고타민 네오-에르고틴 리게타민 세카진 세쿠판	113-15-5 379-79-3 (S)
	(ii) 리세르그아마 이드 (P) (2939.69)	9,10-디데히드로-6- 메틸에르콜린-8- 카르복사미드 에르긴 에르콜린-8-카르복사미드, 9,10-디데히드로-6-메틸 인돌로[4,3-fg]퀴놀린, 에르콜 린-8-카르복사미드 유도체	478-94-4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화학물질(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 등록번호 요약서비스(CAS)
암페타민 (INN) 또는 α -메틸-펜에틸아민 (2921.46)	(i) 알릴벤젠 (P) (2902.90)	3-페닐프로판-1-엔	300-57-2
	(ii) 페닐-아세톤 (P) (2914.31)	P-2-P 페닐프로판-2-온 1-페닐-2-옥소프로판 벤질메틸케톤 BMK	103-79-7
	(iii) 캐친(INN) (P) (2939.43)	놀슈도에페드린 아디포세텐 N 2-아미노-1-히드록시-1- 페닐프로판 2-아미노-2-메틸-1- 페닐에탄올 2-아미노-1-페닐프로판-1-올 벤젠메탄올, α -(1-아미노에틸) E 50 엑스폰시트 푸코아디포 카틴 미니스캡 M.D. 미누신 노리소에페드린 1-페닐-2-아미노프로판-1-올 페닐프로놀아민 슈도놀에페드린 리두폼	37577-07-04
			36393-56-3
			492-39-7
			103-82-2
			75-12-7
			100-52-7
			540-69-2
	(iv) 페닐아세트산 (P) (2916.34)	벤젠아세트산 α -톨루산	103-82-2
(v) 포름아마이드 (P) (2924.19)	메탄아마이드 카르밤알데히드 포름산아마이드	75-12-7	
(vi) 벤즈알데히드 (P) (2912.21)	벤조익알데히드 벤젠카르보날	100-52-7	
(vii) 포름산 암모늄 (E) (2915.12)	—	540-69-2	
(viii) 니트로에탄 (E) (2904.20)	—	79-24-3	
(ix) 염화 히드록실 암모늄 (E) (2825.10)	염산히드록실아민 염산옥스암모늄	5470-11-1	
(x) 트랜스- β -메틸- 스티렌 (P) (2902.90)	1-페닐프로펜 프로판-1-에닐벤젠	873-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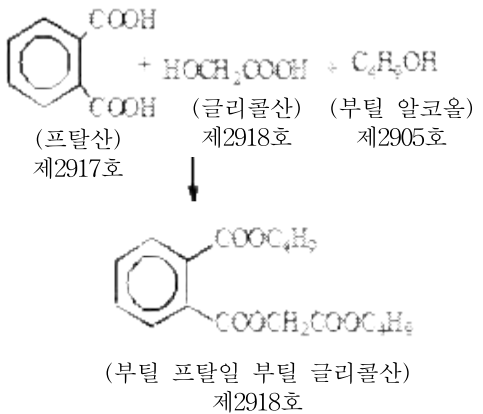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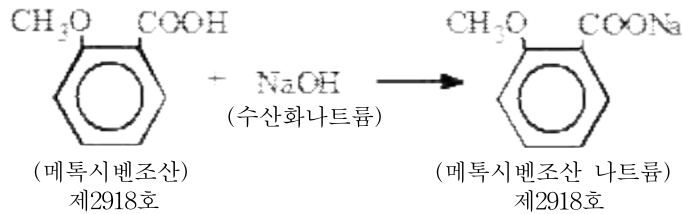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화학물질(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 등록번호 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또는 MDA 또는 α -메틸-3,4-메틸렌- 디옥시페닐아민 (2932.99)	(i) 피페로날 (P) (2932.93)	1,3-벤조디옥솔-5-카르브알데히드 프로토카테츄알데히드, 메틸렌 에테르 1,3-벤조디옥솔-5- 카르복스알데히드 3,4-(메틸렌디옥시)-벤즈알데히드 헬이로트로핀 피페로닐알데히드 디옥시메틸렌프로토- 카테츄익알데히드	120-57-0
	(ii) 사프롤 (P) (2932.94)	5-알릴-1,3-벤조디옥솔 1,2-메틸린디옥시- 4-프롭-2-에닐벤젠	94-59-7
	(iii) 이소사프롤 (P) (2932.91)	5-프롭-1-에닐-1,3-벤조디옥솔 1,2-메틸렌디옥시-4- 프롭-1-에닐벤젠	120-58-1
	(iv) 니트로에탄 (E) (2904.20)	-	79-24-3
	(v) 1-(1,3-벤조-디 옥솔-5-일) 프 로판-2-온 (P) (2932.92)	3,4-메틸렌디옥시-페닐아세톤 3,4-메틸렌디옥시-페닐프로판 -2-온	4676-39-5
	(vi) 포름산 암모늄 (E) (2915.12)	-	540-69-2
	(vii) 염화 히드록실 암모늄 (E) (2825.10)	염산히드록실아민 염산옥스암모늄	5470-11-1
	(viii) 포름아마이드 (E) (2924.19)	메탄아마이드 카르밤알데히드 포름산아마이드	75-12-7
메탐페타민 (INN) 또는 2-메틸아미노-1-페닐프 로판 또는 데옥시에페드린 (2939.45)	(i) 페닐아세톤 (P) (2914.31)	P-2-P 페닐프로판-2-온 1-페닐-2-옥소프로판 벤질메틸케톤 BMK	103-79-7
	(ii) 엔-메틸-포름아 마이드 (P) (2924.19)	메틸포름아마이드	123-39-7
	(iii) 염화벤질 (P) (2903.99)	(클로로메틸)벤젠 α -클로로톨루엔	100-44-7
	(iv) 에페드린 (P) (2939.41)	1-페닐-1-히드록시-2- 메틸아미노프로판 2-메틸아미노-1-페닐-프로판 -1-올	299-42-3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화학물질(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 등록번호 요약서비스(CAS)
메틸렌-디옥시메탐페 타민 또는 MDMA 또는 α -메틸-3,4-메틸렌-디 옥시페네틸-(메틸)아민 또는 XTC(엑스터시) (2932.99)	(v) 메틸아민 (P) (2921.11)	아미노메탄 모노메틸아민 메탄아민	74-89-5
	(vi) 페닐아세트산 (P) (2916.34)	벤젠아세트산 α -톨루산	103-82-2
	(vii) 벤즈알데히드 (P) (2912.21)	벤조익알데히드 벤젠카르보날	100-52-7
	(i) 메틸아민 (E) (2921.11)	아미노메탄 모노메틸아민 메탄아민	74-89-5
	(ii) 피페로날 (P) (2932.93)	1,3-벤조디옥솔-5- 카르바알데히드 프로토키아테추알데히드, 메틸렌에테르 1,3-벤조디옥솔-5- 카르복스알데히드 3,4-(메틸렌디옥시)- 벤즈알데히드 헬리오트로핀 피페로닐알데히드 디옥시메틸렌프로토키아테추익 알데히드	120-57-0
	(iii) 사프롤 (P) (2932.94)	5-알릴-1,3-벤조디옥솔 1,2-메틸렌디옥시-4- 프롭-2-에닐벤젠 5-프롭-2-에닐-1,3- 벤조디옥솔	94-59-7
	(iv) 이소사프롤 (P) (2932.91)	5-프롭-1-에닐-1,3- 벤조디옥솔 1,2-메틸렌디옥시-4- 프롭-1-에닐벤젠	120-58-1
	(v) 니트로에탄 (E) (2904.20)	—	79-24-3
	(vi) 1-(1,3-벤조-디 옥솔-5-일) 프 로판-2-온 (P) (2932.92)	3,4-메틸렌디옥시- 페닐아세톤 3,4-메틸렌디옥시페닐-프로판-2-온	4676-39-5
	메타쿠알론 (INN) 또는 2-메틸-3-O-톨릴-4(3H) -퀴나졸리논 (2933.55)	(i) 안트라닐산 (P) (2922.43)	σ -아미노벤조산 2-아미노벤조산
(ii) σ -톨루이딘 (P) (2921.43)		σ -아미노톨루엔 2-아미노톨루엔	95-53-4
(iii) σ -니트로톨루엔 (P) (2904.20)		1-메틸-2-니트로벤젠 2-니트로톨루엔	88-72-2
(iv) 무수(無水)초산 (E) (2915.24)		아세트알하이드라이드 아세트옥사이드 아세틸옥사이드 에타노익안하이드라이드	108-24-7
(v) 2-메틸-1,3-벤조 자 술 (P) (2934.99)		—	95-21-6
(vi) 2-아세트아미도 - 벤 조 산 (P) (2924.23)		2-아세틸아미노벤조산 σ -아세틸아미노벤조산 엔-아세틸안트라닐산	89-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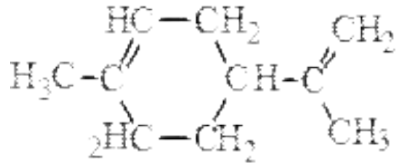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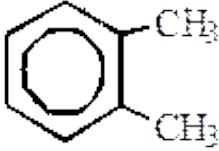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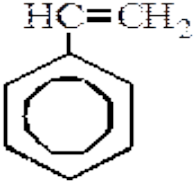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화학물질(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 등록번호	요약서비스(CAS)
메스칼린 또는 3,4,5-트리메톡시-페 네틸아민 (2939.79)	(i) 3,4,5-트리메톡시-벤즈알 데히드 (P) (2912.49)	3,4,5-트리메톡시포르밀- 벤젠	86-81-7	
	(ii) 3,4,5-트리메톡시-벤조산 (P) (2918.99)	갈산, 트리메틸	118-41-2	
	(iii) 3,4,5-트리메톡시벤조일 클로라이드 (P) (2918.99)	—	4521-61-3	
	(iv) 3,4,5-트리메톡시벤질 알 코올 (P) (2909.49)	—	3840-31-1	
	(v) 니트로메탄 (E) (2904.20)	—	75-52-5	
펜사이클리딘 (INN) 또는 PCP 또는 1-(1-페닐-시클로헥 실)피페리딘 (2933.33)	(i) 피페리딘 (P) (2933.32)	헥사하이드로피리딘	110-89-4	
		펜타메틸레니민 피멜릭케톤	108-94-1	
	(ii) 시클로헥사논 (P) (2914.22)	케토헥사메틸렌 히트룰 o 아논 나돈		
(iii) 브로모벤젠 (P) (2903.99)	모노브로모벤젠 브롬화페닐	108-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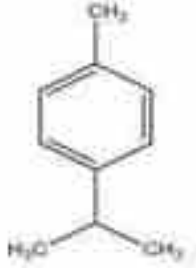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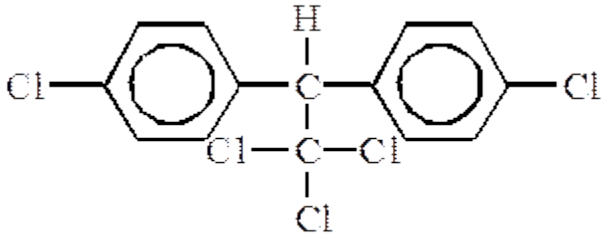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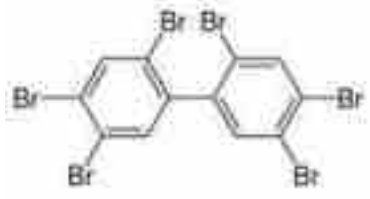
제 29 류 해설에서 설명하는 특정 물품의 화학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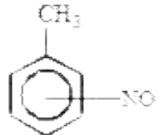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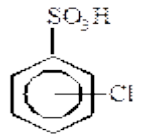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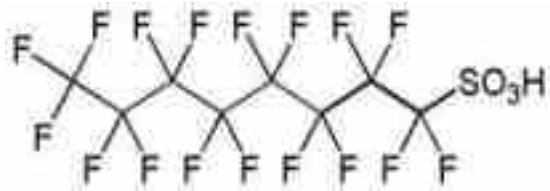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총설	(G)	에스테르, 염, 배위화합물과 특정 할로겐화물의 분류	
		(1)	에스테르	
VI-29-7			(a)	<p>초산 제2915호 + 디에틸렌글리콜 제2909호 → 초산 디에틸렌글리콜 제2915호</p>
			(b)	<p>(벤젠술폰산) 제2904호 + (메틸 알코올) 제2905호 → (벤젠술폰산 메틸) 제2905호</p>
			(c)	<p>(부틸 수소 프탈산) 제2917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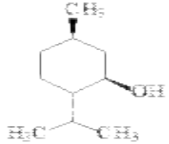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7)		(G)	(1)	(d)		 <p> <chem>O=C(O)c1ccccc1C(=O)O</chem> + <chem>OCC(=O)O</chem> + <chem>CCCCO</chem> (프탈산) (글리콜산) (부틸 알코올) 제2917호 제2918호 제2905호 </p> <p>↓</p> <p> <chem>CCCCOC(=O)c1ccccc1C(=O)OCCCC</chem> (부틸 프탈일 부틸 글리콜산) 제2918호 </p>
				(d)		$\text{CH}_3\text{COOH} + \text{HOCH}_2\text{CH}_3 \longrightarrow \text{CH}_3\text{COOCH}_2\text{CH}_3$ <p> (초산) (에틸 알코올) (아세트산 에틸) 제2915호 제2915호 </p>
			(2)		표	
				(a)(i)		 <p> <chem>COc1ccccc1C(=O)O</chem> + <chem>[Na]OH</chem> → <chem>COc1ccccc1C(=O)[O-][Na+]</chem> (메톡시벤조산) (수산화나트륨) (메톡시벤조산 나트륨) 제2918호 제2918호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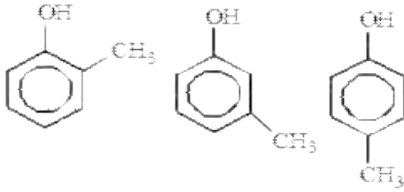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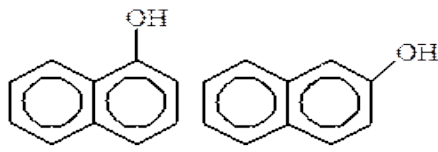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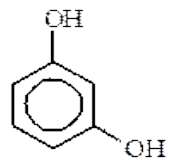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7)		(G)	(2)	(a)(i)		<p>(부틸 수소 프탈산) 제2917호</p> <p>(수산화구리)</p> <p>(부틸 구리 프탈산) 제2917호</p>
VI-29-8				(ii)		<p>(디에틸아민) 제2921호</p> <p>(염산) 제2806호</p> <p>(디에틸아민 염산염) 제2921호</p>
				(b)(i)		<p>(초산) 제2915호</p> <p>(아닐린) 제2921호</p> <p>(초산 아닐린) 제2921호</p>
				(ii)		<p>(메틸아민) 제2921호</p> <p>(페녹시초산) 제2918호</p> <p>(페녹시초산 메틸아민) 제2918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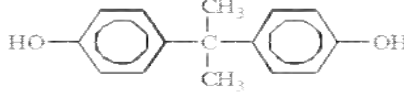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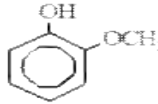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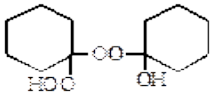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9		(G)	(4)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 (염화이소부틸릴 : 29.15)	$\text{(CH}_3\text{)}_2\text{CH}\cdot\overset{\text{O}}{\parallel}{\text{C}}\cdot\text{Cl}$
	29.02			환(環)식 탄화수소	
		(B)		시클로테르펜	
VI-2902-2			(3)	리모넨	
		(C)		방향족 탄화수소	
VI-2902-3			(I)	(c) <i>o</i> -크실렌	
			(d)(1)	스티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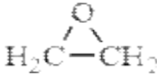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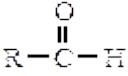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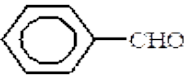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02-3)	(29.02)	(C)	(I)	(d)(4)	<i>p</i> -시멘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F)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VI-2903-4			(6)		DDT (ISO) (클로페노탄 (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또는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11)		2,2'.4,4'.5,5'-헥사브로모비페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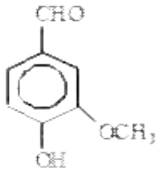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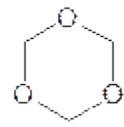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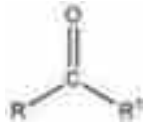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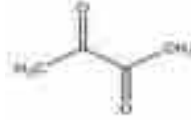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 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A)			술폰화유도체	
VI-2904-1			(1)	(a)	에틸렌술폰산	$\text{CH}_2=\text{CHSO}_3\text{H}$
		(B)			니트로화유도체	
			(1)	(d)	트리니트로메탄	$\text{CH}(\text{NO}_2)_3$
		(C)			니트로소화유도체	
VI-2904-2			(2)		니트로소톨루엔	
		(D)			술폰할로겐화유도체	
			(1)		클로로벤젠술폰산	
			(5)		과불화옥탄술폰산 (PF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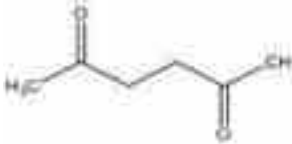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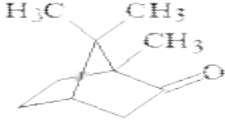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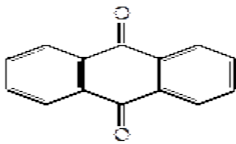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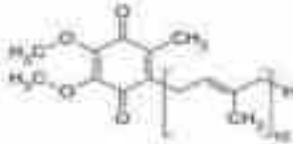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B)			불포화 1 가 알코올	
VI-2905-3			(1)		알릴 알코올	$H_2C=CHCH_2OH$
		(C)			디올 및 그 밖의 다가알코올	
			(II)	(4)	만니톨	$ \begin{array}{c} CH_2OH \\ \\ HOCH \\ \\ HOCH \\ \\ HCOH \\ \\ HCOH \\ \\ CH_2OH \end{array} $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 화유도체	
		(A)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VI-2906-1			(1)		멘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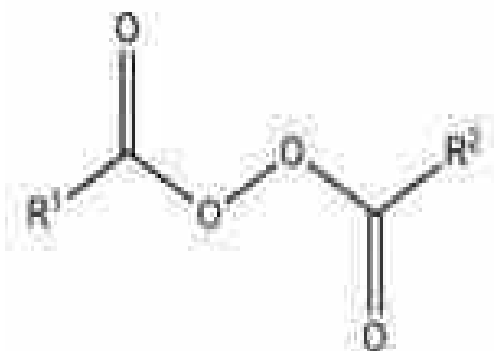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A)		단핵(單核) 1 가페놀	
VI-2907-2			(2)	크레졸(들)	 (o-크레졸) (m-크레졸) (p-크레졸)
		(B)		다핵(多核) 1 가페놀	
			(1)	나프톨(들)	 (α-나프톨) (β-나프톨)
		(C)		다가페놀	
			(1)	레조르시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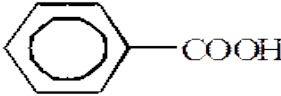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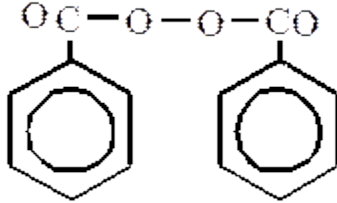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07-3	(29.07)	(C)	(3)	비스페놀 A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 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C)		에테르페놀과 에테르알코올 페놀	
VI-2909-3			(1)	구아이나콜	
		(D)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	
VI-2909-4				과산화케톤 (과산화 사이클로헥사논)	
				1,1-디(tert-부틸퍼옥시)시클로헥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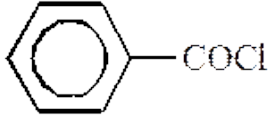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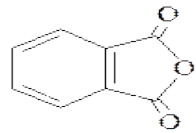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 에폭시 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VI-2910-1		(1)			옥시란	
	29.11				아세탈 ·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VI-2911-1		(A)			아세탈과 헤미아세탈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VI-2912-2		(A)			알데히드	
VI-2912-3			(IV)	(1)	벤즈알데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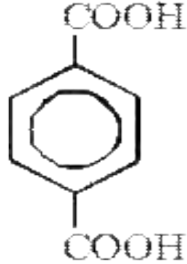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B)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4)	바닐린	
		(C)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VI-2912-4			(1)	트리옥산	
	29.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VI-2914-2		(A)	(I)	케톤	
			(8)	디아세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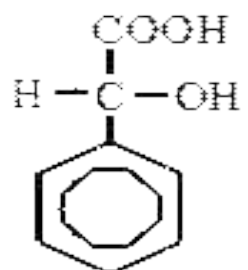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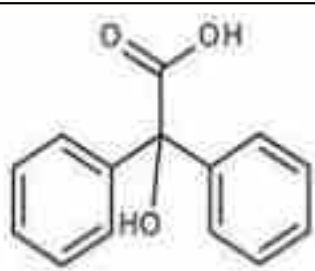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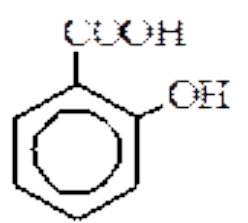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A)	(I)	(9)	아세틸아세톤	
				(10)	아세토닐아세톤	
			(II)	(1)	장뇌	
VI-2914-4	(29.14)	(E)			퀴논	
			(1)		안트라퀴논	
VI-2914-5	(29.14)	(F)			퀴논-알코올, 퀴논-페놀, 퀴논-알데히드와 그 밖의 산소 관능 퀴논	
			(4)		코엔자임 Q10 (유비데카레논(INN))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 화유도체	
VI-2915-1				(C)	산(酸) 과산화물	
VI-2915-5		(V)	(a)		n-부티르 산(酸)	$\text{CH}_3\text{CH}_2\text{CH}_2\text{CO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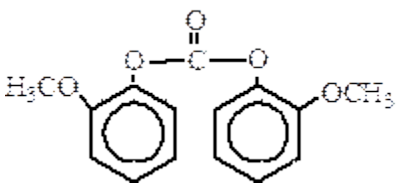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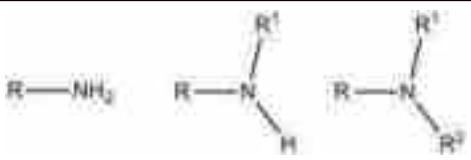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A)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과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VI-2916-1			(1)		아크릴산	$\text{CH}_2=\text{CHCOOH}$
		(C)			방향족(芳香族) 포화 모노 카르복시산과 그 염, 에스테르 와 그 밖의 유도체	
VI-2916-2			(1)		벤조산	
				(a)	과산화벤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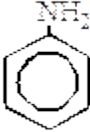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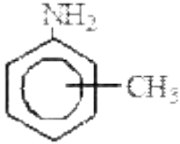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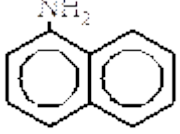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16-2)	(29.16)	(C)	(1)	(b)	염화벤조일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A)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염과 유도체	
VI-2917-1			(3)		아젤라산	$\text{HOOC}(\text{CH}_2)_7\text{COOH}$
VI-2917-2			(5)		무수말레산	
		(C)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염과 그 밖의 유도체	
			(1)		무수프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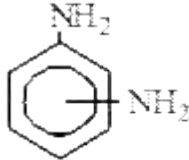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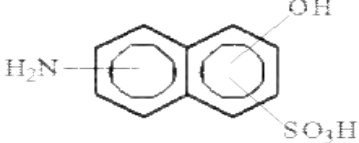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17-2)	(29.17)	(C)	(2)	테레프탈산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無水物) · 할로겐 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A)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염과 그 밖의 유도체	
VI-2918-2			(3)	시트르산	$\begin{array}{c} \text{CH}_2\text{COOH} \\ \\ \text{C}(\text{OH})\text{COOH} \\ \\ \text{CH}_2\text{COOH}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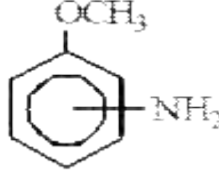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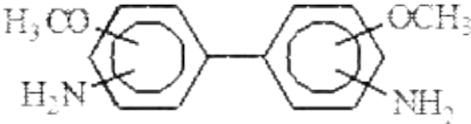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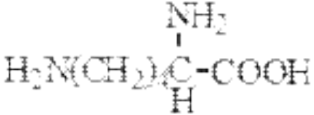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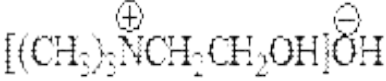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18-3	(29.18)	(A)	(6)	페닐글리콜산(만델산)	
			(8)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B)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염과 그 밖의 유도체	
(VI-2918-3)	(29.18)	(B)	(I)	살리실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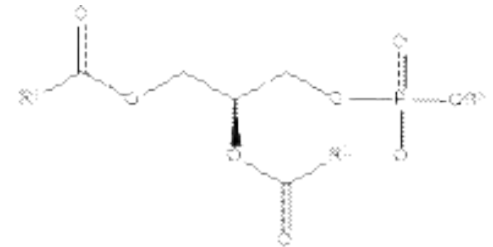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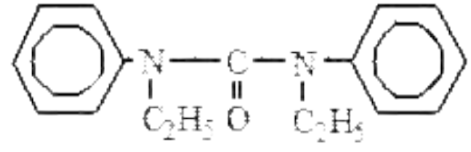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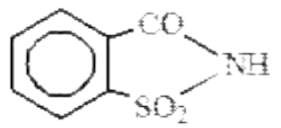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19-1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VI-2919-2		(3)			트리부틸 인산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 (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A)			티오인산에스테르	
VI-2920-1					나트륨 O,O-디부틸디티오인산	
		(B)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디메틸 포스파이트	
VI-2920-2		(D)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	
					메틸 질산	CH ₃ O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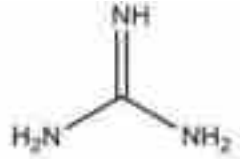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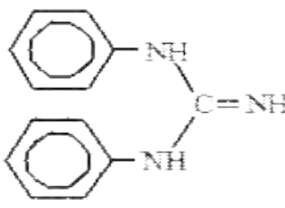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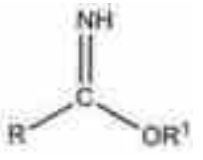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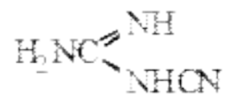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0-2)	(29.20)	(D)		니트로글리세롤(니트로글리세린)	$\begin{array}{c} \text{CH}_2\text{ONO}_2 \\ \\ \text{CHONO}_2 \\ \\ \text{CH}_2\text{ONO}_2 \end{array}$
		(E)		탄산에스테르나 퍼옥소카르보닉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1)	탄산 디구아아사실	
		(F)		규산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테트라에틸 실리케이트	$\begin{array}{c} \text{C}_2\text{H}_5\text{O} \\ \diagdown \\ \text{Si} \\ \diagup \\ \text{C}_2\text{H}_5\text{O} \end{array} \begin{array}{c} \text{OC}_2\text{H}_5 \\ \diagdown \\ \text{OC}_2\text{H}_5 \end{array}$
VI-2921-1	29.21			아민관능화합물	
		(A)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VI-2921-2			(4)	에틸아민	$\text{CH}_3\text{-CH}_2\text{-NH}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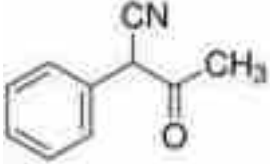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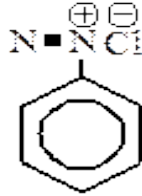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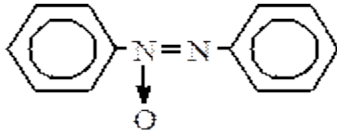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1-2)	(29.21)	(B)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VI-2921-3		(2)	헥사메틸렌디아민	$\text{H}_2\text{N}-\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NH}_2$
		(D)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아닐린	
		(2)	톨루이딘(들)	
		(4)	1-나프탈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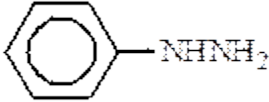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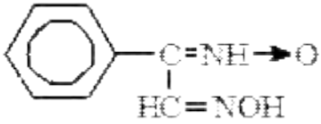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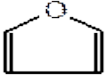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1-4)	(29.21)	(E)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페닐렌디아민(들)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A)		아미노-알코올, 이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이들의 염	
VI-2922-2			(1)	모노에탄올아민	$\text{H}_2\text{N}-\text{CH}_2\text{CH}_2\text{OH}$
		(B)		아미노-나프톨과 그 밖의 아미노-페놀, 이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이들의 염	
			(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 술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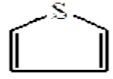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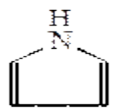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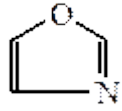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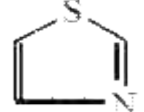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2-3	(29.22)	(B)	(a)	아니시딘(들)	
			(b)	디아니시딘(들)	
		(D)		아미노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1)	리신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 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VI-2923-1		(1)		콜린 (수산화 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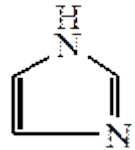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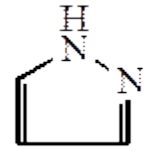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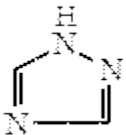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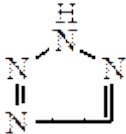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3-1)	(29.23)	(2)		레시틴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B)		환(環)식 아미드	
VI-2924-2			(1) (ii)	디에틸 디페닐우레아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 (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 과 이민관능화합물	
		(A)		이미드	
VI-2925-1			(1)	사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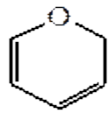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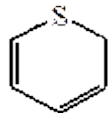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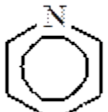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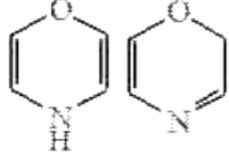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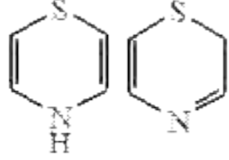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5-1)	(29.25)	(B)			이민	
			(1)		구아니딘	
VI-2925-2		(B)	(1)	(a)	디페닐구아니딘	
			(3)		이미노 에테르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VI-2926-1		(1)			아크릴로니트릴	$\text{CH}_2=\text{CHCN}$
		(2)			1-시아노구아니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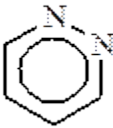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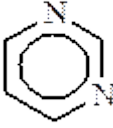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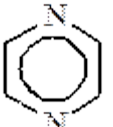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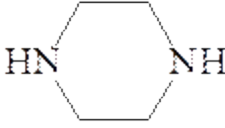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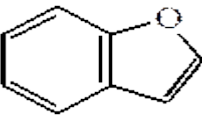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6-1)	(29.26)	(19)		알 파 - 페 닐 아 세 토 아 세 토 니트릴 (APAAN)	
	29.27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A)		디아조화합물	
VI-2927-1		(1)	(a)	염화 벤젠다이아조늄	
		(B)		아조화합물	$R^1N = NR^2$
VI-2927-2		(C)		아족시화합물	$R^1-N_2O-R^2$
		(1)		아족시벤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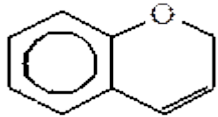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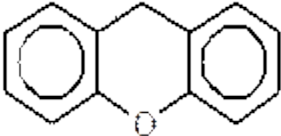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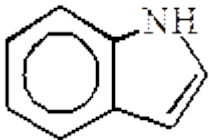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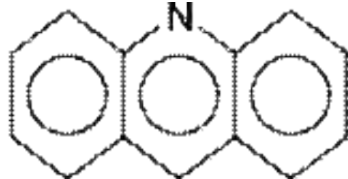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28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VI-2928-1		(1)			페닐히드라진	
		(11)			페닐글리옥심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VI-2929-1		(1)			이소시아네이트	$R-N=C=O$
	제 10 절 총설				유기-무기화합물 · 헤테로고리화합물 · 핵산과 이들의 염, 술폰아미드	
		(A)			5 원 고리(環)	
VI-2930-1		(1)	(a)		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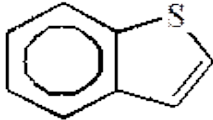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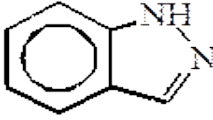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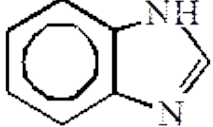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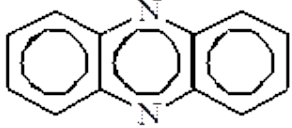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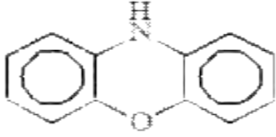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1)	(총설)	(A)	(1)	(b)	티오펜	
				(c)	피롤	
			(2)	(a)	옥사졸	
				(a)	아이속사졸	
				(b)	티아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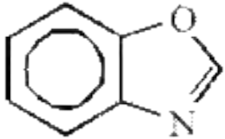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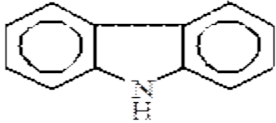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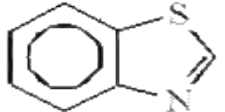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1)	(총설)	(A)	(2)	(c)	이미다졸	
				(c)	피라졸	
			(3)	(a)	푸라잔	
				(b)	트라이azol (1,2,4-트리아졸)	
				(c)	테트라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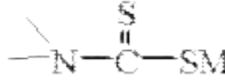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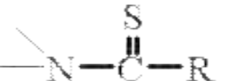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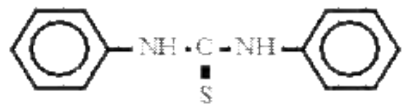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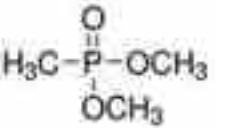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B)		6 원 고리(環)	
			(1)	(a) 피란 (2H-피란)	
				(b) 티인	
				(c) 피리딘	
			(2)	(a) 옥사진 (1,4-옥사진)	
				(b) 티아진 (1,4-티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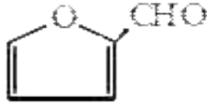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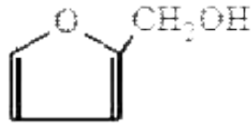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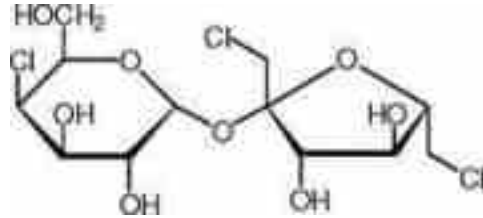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B)	(2)	(c)	피리다진	
				(c)	피리미딘	
				(c)	피라진	
				(c)	피레라진	
		(C)			그 밖의 보다 복잡한 헤테로 고리 화합물	
			(a)		쿠마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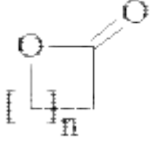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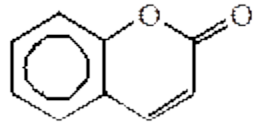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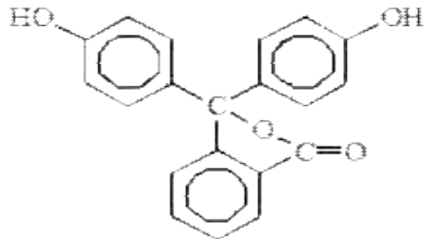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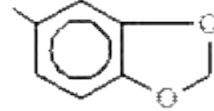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C)	(b)	벤조피란	
			(c)	크산텐	
			(d)	인돌	
			(e)	퀴놀린과 이소퀴놀린	
			(f)	아크리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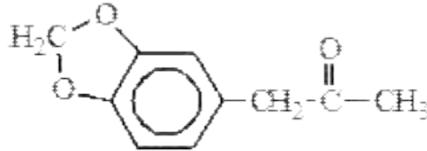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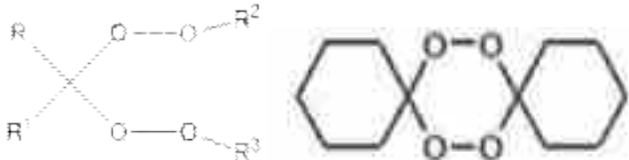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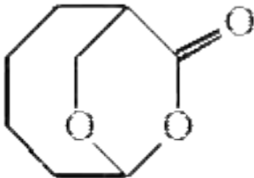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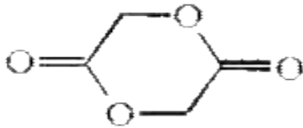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C)	(g)	벤조티오펜 (티오나프텐)	
			(h)	인다졸	
			(ij)	벤지미다졸	
			(k)	페나진	
			(l)	페녹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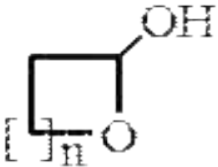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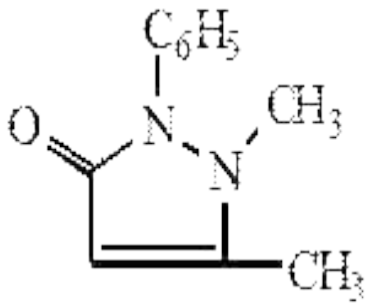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C)	(m)	벤족사졸	
			(n)	카르바졸	
			(o)	퀴나졸린	
		(C)	(p)	벤조티아졸	
	29.30			유기황화합물	C-S 결합을 가진 화합물
VI-2930-3		(A)		디티오카르보산염 (크산틴산염)	ROC(S)SR^1 R1 = 금속 또는 유기 기(基)
			(l)	에틸디티오카르보산나트륨	$\text{C}_2\text{H}_5\text{O-CS}_2\tex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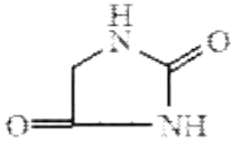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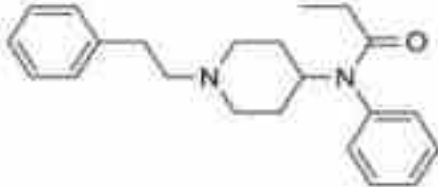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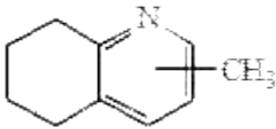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3)	(29.30)	(B)		티오펜아미드 · 디티오펜아미드와 티우람 설파이드	
			(2)	디티오펜아미드	
VI-2930-4		(C)		황화물 (또는 티오에테르)	RSR_2
			(1)	메티오닌	$CH_3SCH_2CH_2CH(NH_2)COOH$
		(D)		티오아미드	
			(2)	티오펜아미드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VI-2931-1		(3)		유기-인(燐) 화합물	C-P 결합을 가진 화합물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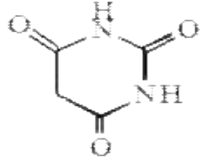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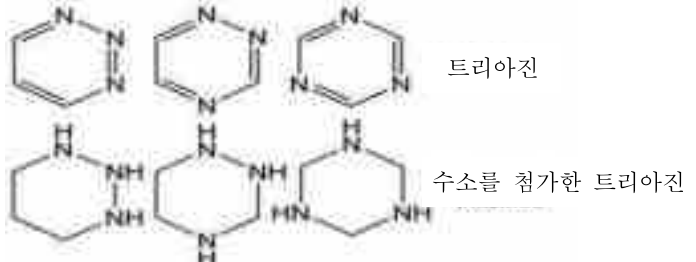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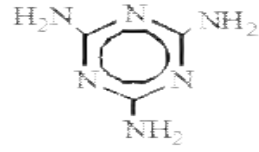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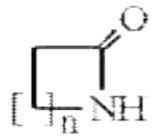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1-1)	(29.31)	(4)	유기-규소 화합물	C-Si 결합을 가진 화합물
			헥사메틸디실록산	$\begin{array}{c} \text{CH}_3 \quad \text{CH}_3 \\ \quad \\ \text{CH}_3 - \text{Si} - \text{O} - \text{Si} - \text{CH}_3 \\ \quad \\ \text{CH}_3 \quad \text{CH}_3 \end{array}$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VI-2932-1		(A)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 10 절 (A) (1) (a) VI-2930-1 페이지에 실린 푸란 구조 참조)
		(2)	2-푸르알데히드	
		(3)	푸르푸릴 알코올	
		(5)	수크랄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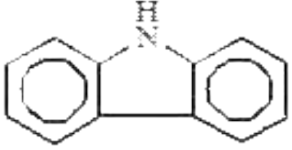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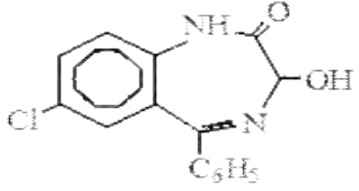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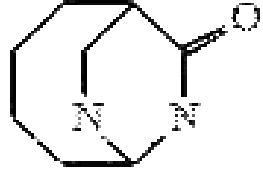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2-2	(29.32)	(B)		락톤	
			(a)	쿠마린	
VI-2932-3			(p)	페놀프탈레인	
		(c)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5)	사프롤	$\text{CH}_2=\text{CH}\cdot\text{CH}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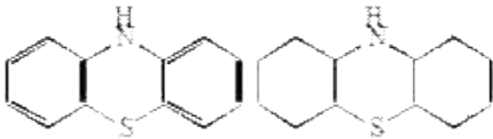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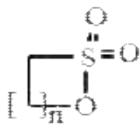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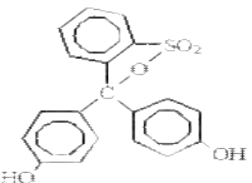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2-3)	(29.32)	(C)	(8)	피페로날	
VI-2932-4			(1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과산화케톤 (제외) - 제 29.09 호 참조	
				2 개의 고리(環) 중 일부를 형성하는 에스테르(락톤)의 예시 (소호해설)	
				디락톤의 예시 (소호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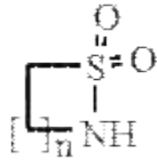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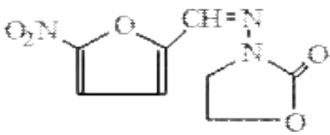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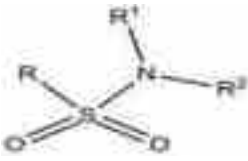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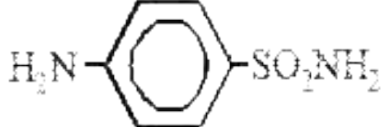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2-4)	(29.32)				안쪽(internal) 헤미아세탈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VI-2933-2		(A)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 10 절 (A) (2) (c) VI-2930-1 페이지에 실린 피라졸 구조 참조)
			(1)		페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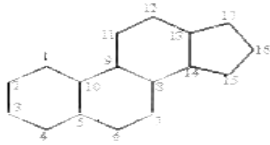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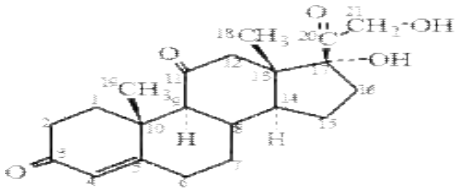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3-2)	(29.33)	(B)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 10 절 (A) (2) (c) VI-2930-1 페이지에 실린 이미다졸 구조 참조)
			(1)	히단토인	
VI-2933-3		(C)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 10 절 (B) (1) (c) VI-2930-2 페이지에 실린 피리딘 구조 참조)
				펜타닐 (INN)	
VI-2933-4		(D)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10 절 (C) (e) VI-2930-2 페이지에 실린 퀴놀린과 이소퀴놀린 구조 참조)
			(4)	테트라히드로메틸퀴놀린 (5,6,7,8-테트라히드로메틸퀴놀린)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E)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 10 절 (B) (2) (c) VI-2930-2 페이지에 실린 피리미딘 구조 참조)
		(1)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VI-2933-5	(29.33)	(F)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1)	멜라민	
		(G)	락탐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3-6	(29.33)	(H)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1)	카르바졸	
			(2)	아크리딘	(제 10 절 (C) (f) VI-2930-2 페이지에 실린 아크리딘 구조 참조)
VI-2933-7				옥사제팜 (소호해설)	
				2 개의 고리(環)를 형성하는 아미드(락탐)의 예시 (소호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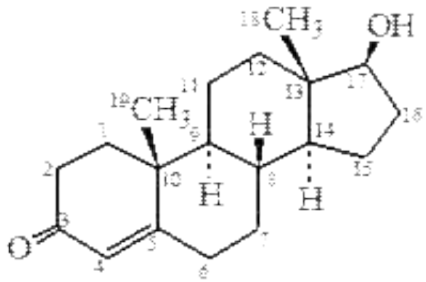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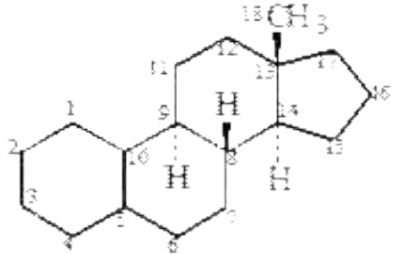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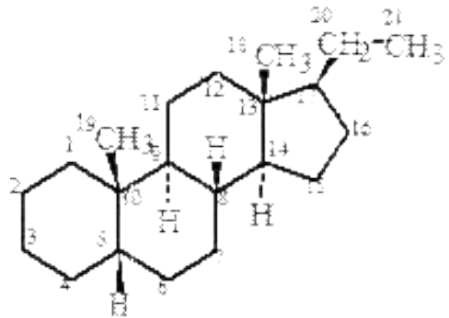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VI-2934-1		(A)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 10 절 (A) (2) (b) VI-2930-1 페이지에 실린 티아졸 구조 참조)
		(B)			벤조티아졸 링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10 절 (C) (p) VI-2930-2 페이지에 실린 벤조티아졸 구조 참조)
VI-2934-2		(C)			페노티아진 링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D)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1)		설통	
				(a)	페놀술폰프탈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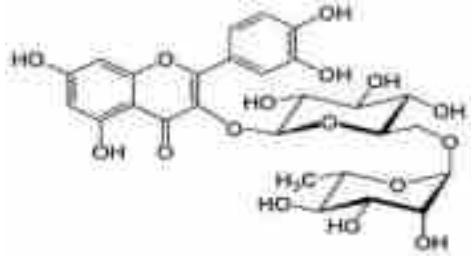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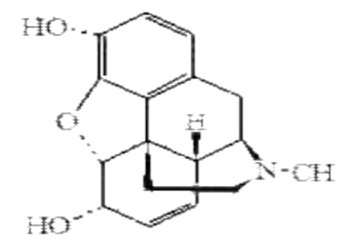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4-2)	(29.34)	(D)	(2)	설팀	
			(4)	푸라졸리돈 (INN)	
VI-2935-1	29.35			술폰아미드	
		(1)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p-아미노벤젠술폰아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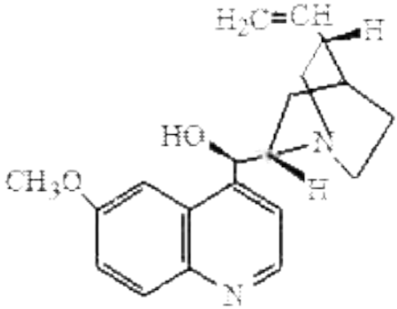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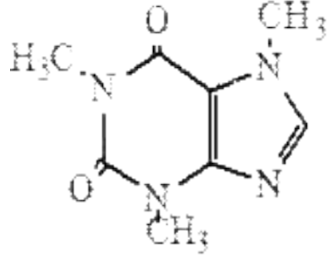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V)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 류코트리엔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VI-2937-2			(b)		고난	
		(B)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1)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VI-2937-5				(a)	코르티손 (I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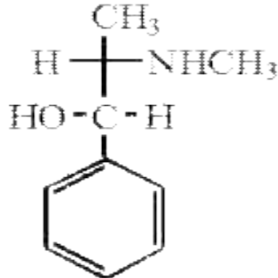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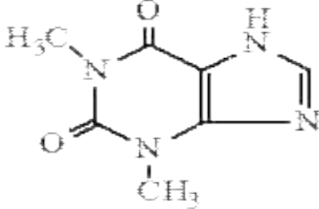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7-5)	(29.37)	(B)	(1)	(b)	히드로코르티손 (INN)	
VI-2937-6			(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a)	프로게스테론 (INN)	
VI-2937-8		일람표			안드로스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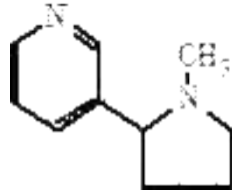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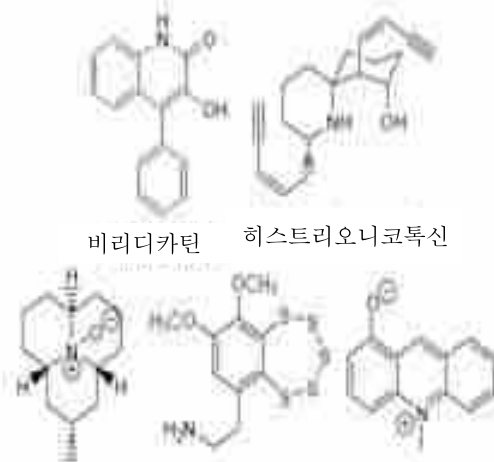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7-9	(29.37)	일람표	에스트론 (INN)	
VI-2937-12			프레드니솔론 (INN)	
			프레드니손 (I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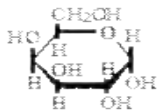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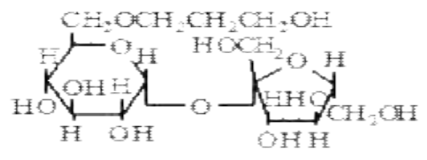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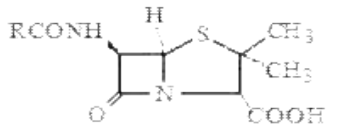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7-13	(29.37)	일람표	테스토스테론 (INN)	
			에스트란	
			프레그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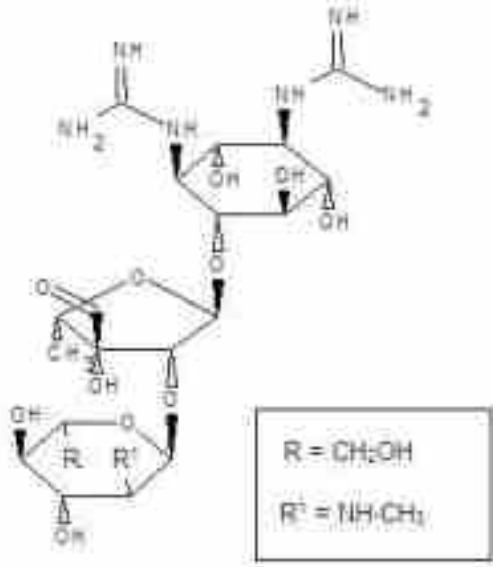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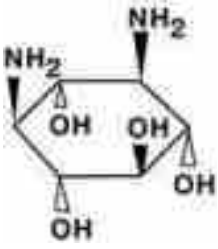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VI-2938-1		(1)			루토시드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A)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VI-2939-2			(1)		모르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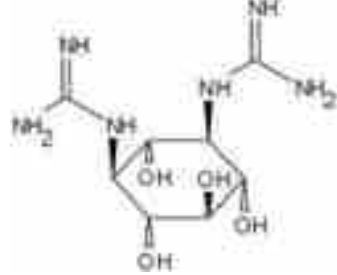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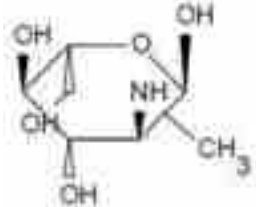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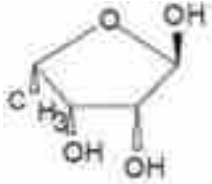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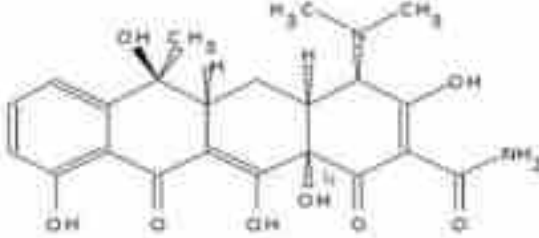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9-3)	(29.39)	(B)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퀴닌	 <p>The image shows the chemical structure of Quinine. It consists of a quinoline ring system with a methoxy group (CH₃O) at the 8-position and a quinuclidine ring system at the 4-position. The quinuclidine ring has a vinyl group (H₂C=CH) and a hydroxyl group (HO) attached to it.</p>
		(C)		카페인과 그 염	
				카페인	 <p>The image shows the chemical structure of Caffeine. It is a purine ring system with methyl groups (CH₃) at the 1, 3, and 7 positions and oxygen atoms (O) at the 2 and 6 position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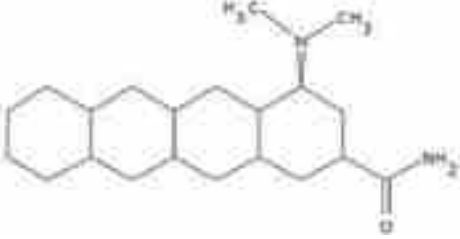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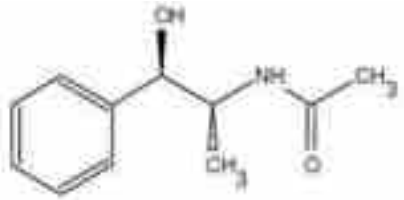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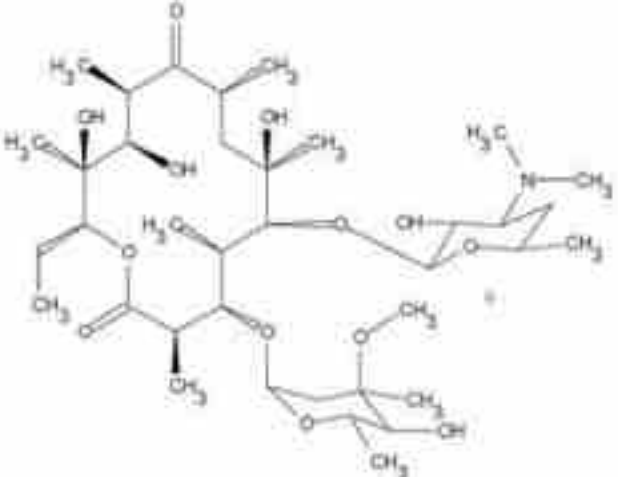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9-3)	(29.39)	(D)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에페드린	
		(E)	테오피린·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E)	테오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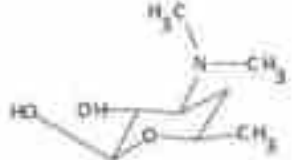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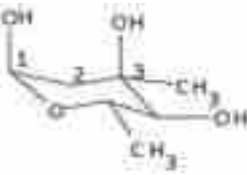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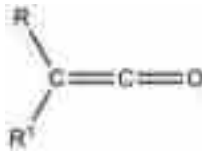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9-3)	(29.39)	(G)	니코틴과 그 염	
			니코틴	
VI-2939-6			그 밖의 비식물성 알칼로이드	
		(I)	비리디카틴 (곰팡이 알칼로이드), 히스트리오니코톡신 (동물 알칼로이드), 코시넨린 (곤충 알칼로이드), 바라신 (해양 알칼로이드)와 프로시아닌 (박테리아 알칼로이드)	 <p>비리디카틴 히스트리오니코톡신</p> <p>코시넨린 바라신 프로시아닌</p>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A)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갈락토오스	$ \begin{array}{c} \text{CHO} \\ \\ \text{HCOH} \\ \\ \text{HOCH} \\ \\ \text{HOCH} \\ \\ \text{HCOH} \\ \\ \text{CH}_2\text{OH} \end{array} $ 
		(B)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VI-2940-2			(1)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29.41				항생물질	
VI-2941-1		(1)			페니실린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41-1)	(29.41)	(2)		스트렙토마이신	 <p>The diagram shows the chemical structure of Streptomycin, a glycosaminoglycoside. It consists of a streptidine ring system linked to a 2-deoxystreptose sugar, which is further linked to a 2-deoxy-L-xylofuranose sugar. The structure includes various hydroxyl groups and amino groups. A legend box specifies the substituents: R = CH₂OH and R' = NH-CH₃.</p>
VI-2941-2				스트렙타민 (스트렙토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p>The diagram shows the chemical structure of Streptamine, a bicyclic diamine. It consists of two fused six-membered rings, one of which is a piperidine ring with an amino group (NH₂) at the 2-position. The structure also shows several hydroxyl groups (OH) attached to the rings.</p>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41-2)	(29.41)		스트렙티딘 (스트렙토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메틸글루코사민 (스트렙토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5-데옥실리소스 (스트렙토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VI-2941-1		(3)	테트라사이클린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41-3	(29.41)	(3)	4-디메틸아미노-나프타신-2-카르복시아미드(완전히 수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테트라사이클린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4)	엔-(2-히드록시-1-메틸-2-페넬)아세트아미드 (클로람페니콜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VI-2941-1		(5)	에리트로마이신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41-3)	(29.41)	(5)	13-에틸-13-트리데카놀라이드 (에리트로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데소사민 (에리트로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마이카로스 (에리트로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29.42		그 밖의 유기 화합물	
VI-2942-1		(1)	케텐	
		(2)	디에틸에테르를 가진 삼플루 오르붕소 복합물	$(C_2H_5)_2O \cdot BF_3$

제 30 류

의료용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제4부).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
 - 나.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물품[예: 정제(tablet)·추잉껌·패치(피부투여 방식)](제2404호)
 - 다.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煨燒)하거나 곱게 부순 플라스틱(plaster)(제2520호)
 - 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1호)
 - 마.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
 - 바. 제3401호의 비누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의약품을 첨가한 것
 - 사.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3407호)
 - 아.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제3502호)
 - 자.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
2.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향체(MAB : monoclonal antibody), 항체 프라그먼트(fragment), 항체 콘주게이트(conjugate), 항체 프라그먼트 콘주게이트(fragment conjugate), 인터류킨(interleukin), 인터페론(IFN : interferon), 케모킨(chemokine),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 tumor necrosis factor), 성장인자(GF : growth factor), 조혈소, 집락촉진인자(CSF : colony stimulating factor)]
3. 제3003호·제3004호와 이 류의 주 제4호라목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혼합하지 않은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혼합하지 않은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 2) 제28류나 제29류의 모든 물품
 -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추출물(extract)로서 단순히 표준화하거나 용매에 용해한 것
 -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추출물(extract)
 - 3) 천연의 광천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4.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제6부
제30류**

-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않은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이나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마.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활성 의약품을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 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 아.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촉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 차. 폐(廢)의약품[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한 의약품]
- 카.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結腸瘻), 회장루(回腸瘻), 요루 주머니와 이들의 접촉 웨이퍼(wafer)·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

○
○ ○

소호주:

1. 제3002.13호와 제3002.14호에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혼합하지 않은 물품, 순수한 물품으로 본다.
 - 나. 다음은 혼합된 물품으로 본다.
 - 1) 가목에 언급된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용해된 것
 - 2) 가목 및 나목1)의 물품에 보존이나 운반에 필요한 안정제를 첨가한 것
 - 3) 가목, 나목1) 및 나목2)의 물품에 그 밖의 다른 첨가제를 첨가한 것
2. 제3003.60호와 제3004.60호는 그 밖의 의약적 활성성분과 결합된 경구 섭취용 아르테미시닌(INN)을 함유하는 의약품, 또는 다음에 열거된 활성성분(그 밖의 의약적 활성성분과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포함한다.
아모디아퀸(INN), 아르텔린산과 그 염, 아르테니몰(INN), 아르테모틸(INN), 아르테메테르(INN), 아르테수네이트(INN), 클로로퀸(INN), 디히드로아르테미시닌(INN), 루메판트린(INN), 메플로퀸(INN), 피페라퀸(INN), 피리메타민(INN), 술파독신(INN).

총설

이 류에는 약제로서의 효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30류의 의약품(예: 기능성 단백질과 펩타이드·항체 프라그먼트)과 폴리에틸렌글리콜(PEGs) 폴리머(polymer)를 결합시킨 페그화(pegylated)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 류의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예: 제3002호의 페그 인터페론(peginterferon)(INN)].

30.01 -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300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장기(臟器)요법용의 동물성 선(腺 : gland)과 그 밖의 기관**(예: 뇌·척수·간·콩팥·비장·췌장·유선·고환·난소)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B) **선(腺 : gland)·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 분비물의 추출물(extract)로서 장기(臟器 : organ)요법용의 것** : 용제 추출·침전·응집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것이다. 이들 추출물(extract)은 고형·반고형·액체 상태의 것과 그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여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만든 것이 있다.

선(腺)·기관의 분비물로 된 장기(臟器 : organ)요법용의 추출물(extract)에는 담즙추출물을 포함한다.

(C) **헤파린(heparin)과 그 염 : 헤파린(heparin)**은 포유동물 조직에서 얻은 복합 유기산[무코다당류(muco-polysaccharide)]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의 조성은 조직의 원천에 따라 다르다. 헤파린과 그 염은 특히 혈액응고 저지제와 같은 의약품에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이들의 활성도(活性度)에 상관없이 여기에 분류한다.

(D) **예방용·치료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적골수(red bone marrow)** : 글리세롤(glycerol)에 보존되어 있는 것

(2) **뱀독액·벌침액**의 건조 플레이크(flake)에 포장한 것과 이들의 독액으로부터 제조된 비세균성 크립토독소

위 (1)(2)의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였거나 소매용 모양·소매용 포장을 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

(3) **뼈·기관·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 (산 것인지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살균 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용·이식용으로서 이들의 포장에는 사용법 등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선(腺 : gland)과 그 밖의 동물의 기관으로서 신선·냉장·냉동·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제2류·제5류**)

(b) 쓸개즙(bile)(건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0510호**)

(c) 선(腺 : gland)과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extract)로부터 얻어지는 **제29류**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과 그 밖의 물품. 예: 아미노산(**제2922호**)·비타민(**제2936호**)·호르몬(**제2937호**)

제6부
30.01

- (d)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특정의 면역글로불린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예: “노말” 혈청·사람의 노말면역글로불린(normal immunoglobulin)·혈장·피브리노겐·피브리린](제3002호)
- (e) 세포 배양체(제3002호)
- (f)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의 특성을 갖는 물품(해당 해설서 참조)
- (g) 글로불린(globulin)과 글로불린 분획물(혈액·혈청의 것은 제외)로서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제3504호)
- (h) 효소(제3507호)

30.02 -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42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49 - 기타

-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51 - 세포치료법용 제품

3002.59 - 기타

3002.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사람의 피**(예: 앰플에 밀봉한 사람의 피)

(B)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조제되지 않은 동물의 피는 **계0511호**에 해당된다.

(C) **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 공정에 의하여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항혈청이나 그 밖의 혈액 분획물(생물공학 공정에 의해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혈청(sera)은 혈액이 응고한 후에 분리되는 액체분획물이다.

이 호에는 특히 혈액(혈관내피세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혈관내피세포를 포함한다): “노멀(normal)” 혈청·인(人)노멀면역글로불린·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분획물과 거기에 따른 절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부분)·혈장·트롬빈·피브리노겐·피브린과 그 밖의 혈액의 응고인자·트롬보모듈린·혈액글로불린·혈청글로불린·헤모글로불린. 이 그룹에는 또한 생물공학적 가공방법으로 하여 얻어진 변성 트롬보모듈린과 변성 헤모글로빈을 포함한다[예: 헤모글로빈 크로스푸마릴(INN)이나 헤모글로빈 글루타머(INN)·헤모글로빈 라피머(INN)와 같은 교차연결된 헤모글로빈, 소트롬보모듈린 알파(INN)·트롬보모듈린 알파(INN)].

이 호에는 추가적으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한 혈액알부민[예: 사람의 전혈(全血)의 혈장을 분획함으로써 얻어지는 인(人) 알부민]을 포함한다.

면역혈청(antisera)은 병원성 박테리아·바이러스·독소·알레르기 현상에 의한 질병에 대하여 면역성이거나 면역을 시킨 인체나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면역혈청은 디프테리아·이질·괴저·뇌막염·폐렴·파상풍·연쇄상구균의 감염·백독·채독·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한다. 면역혈청은 진단용(vitro테스트용 포함)에도 사용한다. 특정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은 면역혈청을 정제한 조제품이다.

이 호에서는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제3502호), 글로불린(globulin)[혈액글로불린(blood globulin)과 혈청글로불린(serum globulin)은 제외](제3504호)을 제외한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혈청(sera)”·“인조혈청(artificial sera)”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의약품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데 ; 이들에게는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염화나트륨·그 밖의 화학약품과 화분의 현탁액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등장(等張) 용액(isotonic solution)을 포함한다.

(2) **면역물품(생물 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진단용·치료용·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a) **단일클론의 항체(MAB)** - 배양체나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hybridoma)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이다.
- (b) **항체조각(antibody fragment)** - 항체단백질의 활성부분으로서 예를 들어 특정한 효소 분할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 그룹은 특히 단일 사슬(scFv) 항체를 포함한다.
- (c) **항체 콘주게이트(antibody conjugate)와 항체조각 콘주게이트(antibody fragment conjugate)** - 콘주게이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항체나 항체조각을 함유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조합들이다.

- (i) 항체 - 항체 ;
- (ii) 항체조각 - 항체조각 ;
- (iii) 항체 - 항체조각 ;
- (iv) 항체 - 다른 물질 ;
- (v) 항체조각 - 다른 물질

(iv)와 (v)타입의 콘주게이트(conjugate)에는 단백질 구조에 공유 결합된 효소(예: 알칼리성 포스페타제·피옥시다제·베타갈락토시다제)나 염료(플루오레신)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간단한 검출 반응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인터류킨(interleukin)·인터페론(interferon)(IFN)·케모킨(chemokine)·특정한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TNF)·성장인자(growth factor)(GF)·조혈소·집락촉진인자(colony stimulating factor)(CSF)를 포함한다.

(D)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백신(vaccine)**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백신은 미생물에서 유래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생리 식염수나 오일(리포백신)·그 밖의 매체에 현탁한 제제를 말한다. 이들 제제들은 보통 면역 속성은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독성은 경감시키도록 처리한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백신으로는 재조합백신·펩타이드백신·다당류백신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항원(antigen)·항원의 식별 가능한 부분이나 항원의 식별 가능한 부분(펩타이드·재조합형·단백질접합체·그 밖의 것)의 코딩 유전자(gene coding)를 포함한다. “항원의 식별 가능한 부분(recognised part of an antigen)”은 개체 내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의 일부분이다. 이들 백신의 대부분은 특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핵산 백신(nucleic acid vaccine)을 포함한다. 예로서는 DNA 플라스미드 백신(DNA plasmid vaccine)과 메신저 RNA(mRNA) 백신을 들 수 있다. DNA 플라스미드 백신은 해당하는 병원체의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protein encoding gene)를 운반하며, 반면 mRNA는 병원체의 특정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다. DNA 플라스미드와 mRNA는 모두 인체 내에서 복제되거나, 인체에 신호를 주어 원하는 항원(抗原)을 복제하여 면역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이 호에는 백신혼합물과 독소이드(toxoid)의 혼합물도 포함한다[예: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PT)백신].

이 호에서는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키트로 된 백신[시험 예정인 백신인지나 다른 백신의 시험 대상인 대조물질(control substance)(때때로 "플라세보(placebo)"라고 부른다)인지에는 상관없다]을 **제외한다**(제3006호).

(2) **독소(毒)·독소이드·크립토독소·독소전구물질(프로톡신 : protoxin)[예: 톱살리신(INN)]과 항독소(anti-toxin)**. 이 호의 독소는 펩티드나 단백질이다. 이러한 독소에는 알칼로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제2939호**).

(3)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요구르트·유산)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산 발효균·식초 제조용의 초산 발효균; 페니실린·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 포함한다.

유산 발효균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 밀크·유장(乳漿 : whey)은 **제4류**에 분류한다.

(4) **인간·동물·식물성 바이러스·항바이러스**

(5)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이 호에는 또한 미생물성의 진단용 시약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4호라목에 규정한 것들은 **제외한다**. **제3006호** 참조]. 효소[레네트(rennet)·아밀라아제 등]는 미생물을 근원으로 하는 효소(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아제 등)일지라도 **제외하며(제3507호)**, 또 **죽은** 단세포 미생물(백신은 제외)은 **제외한다(제2102호)**.

(E)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세포 배양체(cell culture)는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에서 벗어나 통제되는 조건 속에서 배양되어 온 세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포 배양체는 다세포(多細胞) 생물,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에서 얻은 세포 배양체를 말한다.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는 제3002.49호에 분류한다.

세포치료법용 제품(cell therapy product)은 세포 조작을 통해 변성한 세포 물질로서 환자에게 주입(injection)하거나 이식(grafting or implanting)하기 위한 것이다.

세포치료법(cell therapy)은 많은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예는 신경계 질환과 암을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특히 심장 질환[심근경색과 심부전증], 당뇨병, 뼈·관절 질환, 유전 질환, 피부·연조직(soft tissue)에 생긴 상처에 적용한다.

세포치료법용 물품은 줄기세포(stem cell)와 줄기세포에서 얻은 물품[예: 조혈모세포·중간엽 줄기세포·배아 줄기세포·제대혈 줄기세포에서 얻은 것], 암 백신과 면역요법제 [예: 수지상 세포 백신·활성 T 림프구나 B 림프구·단핵구·변성 암세포나 비변성 암세포], 동종이계(allogeneic) 채장 섬 세포, 연골 수복(修復)용 연골세포, 케라틴(각질) 생성 세포, 섬유아세포와 간세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들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상관없이 분류하며 벌크 상태나 소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3002.13호

소호 제3002.13호의 면역물품으로서 혼합하지 않은 것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다.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오로지 직접적으로 제조 공정[정제(purification)를 포함한다]의 결과로 그 물품에 존재하게 되는 물질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수반되는 어떠한 요소로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다음의 것들이다.

- (a) 변환되지 않은 초기 원료
- (b) 초기 원료에 존재하는 불순물
- (c) 제조공정[정제(purification)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한 시약(試藥)
- (d) 부산물

소호 제3002.51호

소호 제3002.51호에서 “세포치료법용 물품(cell therapy products)”이란 세포 조작[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농축·확장하거나 기능적으로 변경하는 생체 밖(ex vivo)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을 통해 생물학적 특성을 상당히 변경한 살아있는 세포를 말하며, 수여자를 위한 치료 효과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세포치료법용 물품에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얻은 세포를 포함할 수 있다.

소호 제3002.51호에는 조작하지 않았거나 세포의 해당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작을 거친 세포는 **포함하지 않는다**.

30.03 -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 제3005호 · 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 3003.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3003.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3003.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 3003.39 -- 기타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3003.41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3003.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3003.43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3003.49 -- 기타
- 3003.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유효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3003.90 - 기타

이 호에는 인체나 동물의 질병을 내부·외부에서 치료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물질을 함께 혼합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공식 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혼합 의약제제·전매특효약품 등[목을 가시는 약제(gargle)·점안약·연고·도포제·주사약·항자극제 등과 그 밖의 조제 약제를 포함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그러나 공식 약전에 수록된 제제·전매 특효약품 등이 항상 **제3003호**에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 치료제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피부를 깨끗이 하도록 조제되었을 뿐이고 여드름의 치료나 예방에 주요한 효과를 가지도록 충분한 정도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s)을 가지지 않는 한 **제3304호**에 분류한다.
- (2) 단일 의약물질에 부형제(賦形劑 : excipient)·감미제·응결제·지지물질 등을 함유시킨 조제품
- (3) 정맥 내 투여[즉, 정맥 내에 주사나 점적(點滴 : drip)] 전용 영양제

- (4) 의약품 콜로이드 용액(colloidal solution)과 콜로이드 현탁액(colloidal suspension)(예: 콜로이드 셀레늄). 다만, 콜로이드 황과 단일의 콜로이드 상태 귀금속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콜로이드 황(colloidal sulphur)은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하여 **제3004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제2802호**에 분류한다. 또한 단일 콜로이드상태 귀금속은 의약품 상태로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2843호**에 분류한다. 콜로이드상태 귀금속의 혼합물·타 물질과 하나 이상의 콜로이드상태 귀금속 혼합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 (5) 의약품의 복합 식물성 추출물(extract)(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것을 **포함한다**)
- (6) 제1211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 부분의 의약품 혼합물
- (7) 천연 광천수를 증발시켜 얻은 의약품 염과 이와 유사한 인조 조제품
- (8) 염천수를 농축한 물(예: Kreuznach물)로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약탕용(황탕·요드탕 등)으로 조제된 혼합염(향기가 나게 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9) 건강용 염(예: 탄산수소나트륨·타르타르산·황산마그네슘·설탕의 혼합물)과 이와 유사한 혼합 발포염으로 의약품에 사용하는 것
- (10) 장뇌첨가유(camphorated oil)·페놀첨가유(phenolated oil) 등
- (11) 천식치료(anti-asthmatic)용의 물품(예: 종이·가루 등의 모양으로 된 것)
- (12) 중합체인 이온교환수지에 고정된 의약성분으로 구성된 것들과 같은 “지효성 의약품(retarded effect medicament)”
- (13) 인간 또는 동물용 의약품에 사용하거나 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

*
* *

이 호에 대한 규정은 식이요법용품·당뇨병용품·강화식품·강장음료·천연·인공의 광천수와 같은 식료품이나 음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물품은 각각 **그에 적합한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본래 영양물질만을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식품의 주 영양물질은 단백질계 물질·탄수화물과 지방이며 비타민류와 무기염도 부분적으로 영양물질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의약물질을 함유하는 식료품과 음료는 이들 물질이 단지 식이용법상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그 물품의 에너지 부여나 영양적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그 풍미를 개량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며, 그 물품이 본래 식료품과 음료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또한 식물이나 식물 부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식물·식물 부분에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성(herbal)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예: 완하(laxative)·하제(purgative)·이뇨(diuretic)·구풍(carminative) 기능을 하는 것들]제조에 사용하며, 병의 완화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기여 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물품 등은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106호)**.

추가적으로, 이 호에서는 종종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라고 부르는 조제품으로서 비타민이나 무기물을 함유하면서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거나 운동 성과를 증진시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하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액체·가루(粉)나 이와 비슷한 형태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2106호**나 **제22류**에 분류한다.

반면 이 호에는 식료품이나 음료가 단순히 의약품질의 지지물·매개물·감미제·가공 보조제나 기술적 보조제의 역할에 불과한 조제품(예: 섭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은 포함한다.

식료품이나 음료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 (b)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이들은 치료·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제33류**)
- (c) 약용비누(**제3401호**)
- (d) 살충제·소독제 등(**제3808호**)

30.04 -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3004.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3004.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3004.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 3004.3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 3004.39 -- 기타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3004.41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3004.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3004.43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3004.49 -- 기타
- 3004.50 -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3004.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300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이나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당뇨성 혼수)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제용으로 1.25~10cm³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캡슐·캐세이(cachets)·드롭프스(drops)·파스틸(pastilles)·피부 투여형식의 의약품·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1회 분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이 호에는 피부 투여 형식의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대개 직사각형이나 원형)으로 환자 피부에 직접 적용된다. 활성(active) 물질은 피부에 접촉되는 안쪽 면의 다공성(多孔性) 막으로 밀폐된 저장소에 함유되어 있다. 저장소에서 배출되는 활성 물질은 수동적인 분자확산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직접 혈류에 들어간다. 이러한 방식은 제3005호의 반창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호에는 벌크 상태나 소매포장에 상관없이 1회 복용량으로 한 것을 적용하며 ; 또는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상태·용법·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

이들 표시(언어의 종류에 상관없다)는 레이블·문자·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약제상의 표시나 순도(純度: purity)의 표시만으로는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반면에 아무 표시가 없어도, 혼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물품은,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서 혼합한 물품으로 이루어진 의약품은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지 않은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제3003호**에 분류한다(해당 해설서 참조).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것은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본다.

- (1) 혼합하지 않은 것의 수용액
- (2) 제28류·제29류에 분류하는 모든 물품·이들 물품은 과산화수소의 안정화된 용액과 콜로이드 황을 포함한다.
- (3) 제1302호에 해당하는 단일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로서 단순히 농도를 표준화하였거나 용제(溶劑: solvent)에 용해한 것(제1302호 해설 참조)

그러나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혼합되지 않은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a)·(b)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제3004호에서 항상 **제외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콜로이드은(colloidal silver)은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되거나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제2843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는 의약용에**만**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서, 파스틸·정제·드롭프스(drops)의 물품으로서 황·목탄·사붕산나트륨·벤조산나트륨·염소산칼륨·마그네시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인후용 향정(throat pastille)이나 코프드롭프스(cough drops)로 만든 조제품으로서, 주로 설탕(젤라틴·진분·곡물가루 등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향미제[멘질알코올·박하·유칼리프톨·톨루발삼(tolu balsam) 등의 의약적 성질을 갖는 물품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것은 **제1704호**에 분류한다. 향미제(香味劑) 이외의 의약적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코프드롭프스(cough drops)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소매용 형태나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 호에 분류한다. 단, 정제·드롭프스에 그러한 물질의 함유 비율이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것일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a)·(b)에서 규정한 대로 되어 있으면 다음의 물품도 분류한다.

- (1) 활성 양이온(active cation)(예: 제4급암모늄염)성의 유기계면 활성제·조제품으로서, 방부·소독·살균(bactericidal or germicidal)의 효능을 갖고 있는 것
- (2) 요드와 폴리(비닐피롤리돈)의 반응물품인 폴리(비닐피롤리돈)-요드
- (3) 외과 등급의 황산칼슘으로 만드는 뼈 이식 대체물·부서진 뼈의 강(腔: cavity)에 주입하여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뼈 조직으로 대체된다. 이들 제품은 기질(matrix)이 재흡수되면서 새로운 뼈가 자랄 수 있게 결정질 기질(crystalline matrix)을 제공한다.

그러나 뼈 형성용 시멘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보통 촉진제(경화제)와 활성제를 포함하며 예를 들면, 기존의 뼈에 보철 임플란트를 부착하는데 사용한다(**제3006호**).

*
* *

이 호에 대한 규정은 식이요법용품·당뇨병용품·강화식품·강장음료·천연·인공의 광천수와 같은 식료품이나 음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물품은 각각 **그에 적당한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본래 영양물질만을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식품의 주영양물질은 단백질계 물질·탄수화물과 지방이며 비타민류와 무기염도 영양물질로서의 일부의 기능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의약품질을 함유하는 식료품과 음료는 이들 물질이 단지 식이용법상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그 물품의 에너지 부여나 영양적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그 풍미를 개량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며, 그 물품이 본래의 식료품과 음료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또한 식물·식물 부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식물·식물 부분에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성(herbal) 침출액·식물성 “차(tea)” (예: 완하·통변·이뇨·구풍 기능을 하는 것들)제조에 사용하며,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기여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물품 등은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106호)**.

추가적으로, 이 호에서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라고 부르는 조제품으로서 비타민이나 무기물을 함유하면서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거나 운동 성과를 증진시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하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액체·가루(粉)·캡슐·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비슷한 형태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2106호**나 **제22류**에 분류한다.

반면 이 호에는 식료품이나 음료가 단순히 의약품질의 지지물·매개물·감미제·가공 보조제나 기술적 보조제의 역할에 불과한 조제품(예: 섭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은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뱀(巳)이나 벌(bee)의 독액으로서 의약품의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제3001호**)
- (b)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에 분류하는 물품(조합한 것일지라도)
- (c)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과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비록 이들이 치료나 예방용의 효과를 가지더라도)(**제33류**)
- (d) 약용비누(조합한 것일지라도)(**제3401호**)
- (e) **제3808호**의 살충제·소독제 등으로서 의약품으로 내복용·외용의 것이 아닌 것
- (f)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물품[예: 태블릿(tablet)·추잉껌·패치(피부투여 방식)](**제2404호**)

30.05 -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3005.10 - 접촉성 피복재와 접촉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3005.90 - 기타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iodine)나 살리실산 메틸(methyl salicylate)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여러 가지의 조제피복재·조제 습포제(예: 아마인습포·겨자습포)·약용 반창고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조각 모양·원반 모양이나 그 밖의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전문병원(clinics)·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물 모양이나 접힌 상태로 제시, 보호포장 및 라벨링 등)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피복재를 포함한다.

- (1) **피부의 피복재** : 동물피부조직(보통 돼지의 것)을 냉동하거나 진공 건조시켜 만든 스트립(strip)으로서, 피부가 손실된 부분이나 노출된 피부의 상처·수술감염부위 등에 직접 적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생물피복재로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크기가 있으며, 사용법이 표시된 레이블을 첨부하여 살균용기(소매포장)에 포장되어 있다.
- (2) **액체 상태 피복재** : 스프레이캔(spray can)(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 피막으로 상처를 덮는 데에 사용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예: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예: 변성 비닐공중합물·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 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서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붕대, 반창고와 기브스 붕대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 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煨燒)하였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틱과 치과용 플라스틱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각각 **제2520호·제3407호**)
- (b) 피부투여시스템(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 형식으로 포장된 의약품(**제3004호**)
- (c)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물품(**제3006호**)
- (d)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30.06 -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3006.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3006.3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 3006.40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 3006.50 - 구급상자와 구급대
- 3006.6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3006.7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 기타
- 3006.91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3006.92 -- 폐(廢)의료용품
- 3006.93 --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한다.

(1)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와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외과용 봉합용 봉합실(ligature)도 분류한다(살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봉합실은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그러한 봉합실의 물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캣거트(catgut)(소 · 면양 · 그 밖의 동물의 장으로 만든 가공 콜라겐) ;
- (b) 천연섬유(면 · 견 · 린넨) ;
- (c) 폴리아미드(나일론) · 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성중합섬유 ;
- (d) 금속(스테인리스강 · 탄탈륨 · 은 · 청동).

또한 이 품목에는 시아노아크릴산 부틸(butyl cyanoacrylate)과 염료로 구성된 것과 같은 생체조직 접착제도 분류하는데, 이것으로 처치하면 단량체(單量體 : monomer)가 중합(polymerise)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 물질은 인체의 내 외부 상처 접합용의 봉합재로 널리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살균하지 않은 봉합재는 **제외한다**. 이들은 특성에 따라 해당 부분에 분류한다. 예: 캣거트(catgut)(제4206호)·누에의 거트·방직용 섬유실 등(제11부)·금속선(제71류·제15부)

(2)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 텐트(laminaria tent)**

이 품목은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 텐트**로 한정한다[때때로 갈색이며 표면에 구멍이 난 짧은 해조(海藻)로부터 만든 것]. 이것들은 습기가 있는 물질과 접촉하면 상당히 팽창하여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다.

그러므로 이들은 수술에서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살균하지 않은 물질은 **제외한다(제1212호)**.

(3)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이나 치과용의 지혈제**

이 품목은 출혈을 막기 위하여 외과·치과용에 사용하는 살균 제품으로서 체액에 의해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즈나 섬유(“울”)형의 것과 패드(pad) 모양·외과용 거즈 모양·스트립 모양의 산화 셀룰로오스; 젤라틴 스폰지(sponge)·폼(foam); “울(wool)”이나 “필름(film)”의 알긴산 칼슘거즈 등을 포함한다.

(4)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照影劑 : opacifying preparation)와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으로서 혼합하지 않은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진단용으로 혼합한 것**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照影劑)는 체내 기관 동맥·정맥·요도·담관 등의 검사에 사용하며, 그 성분은 황산 바륨·그 밖의 엑스선 조영물질로 되어 있으며 주사나 입으로 투여(예: 바륨 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진단용 시약(미생물성 진단용 시약 포함)은 주사나 입 등으로 투여된다.

환자에 투여하지 않는 진단용 시약(예: 혈액·뇨 등 검사용과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재료에 따라 그 물질이 해당하는 합당한 호에 분류한다(제28류·제29류·제3002호·제3822호).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뼈 형성용 시멘트**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인산아연 등)·금속산화물·구타페르카(gutta-percha)·플라스틱제 기본 재료로 되어 있다. 이들은 금속합금(귀금속 합금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특별히 치과용 충전제로 조제되어 있다. 이러한 합금들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간혹 “아말감(amalgam)”이라고도 한다. 이 호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충전제를 분류하며 의약물질을 함유한 것과 예방용의 성질이 있는 치과용 시멘트·충전제를 포함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나 태블릿(tablet) 형태이며 때로는 조제에 필요한 용액을 수반하며 포장에는 치과용이라는 표시가 있다.

치근관(dental root canal)을 충전하기 위한 포인트[예: 은·구타페르카(gutta-percha)·종이의 것]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뼈 형성용 시멘트도 분류한다. 이것은 보통 경화제(큐어링제)와 활성제를 포함하며 예를 들면, 기존의 뼈에 보철 임플란트를 부착하는데 사용한다(제3006호). 이 시멘트는 보통 체온에서 경화된다.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煨燒)하였거나 곱게 분쇄한 플라스터(plaster)와 치과용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각각 제2520호·제3407호)**.

또한 외과 등급의 황산칼슘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질(matrix)이 재흡수되면서 새로운 뼈가 자랄 수 있게 결정질 기질(crystalline matrix)을 제공하는 뼈 이식 대체물은 **제외한다(제3004호)**.

(7) 구급상자와 구급대

이들은 소량의 일반의약품(요오드티нк·머큐로크로뎀·과산화수소·아니카티크 등)과 약간의 피복재·붕대·반창고 등과 때로는 소수의 가위·핀셋 등 약간의 기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의사용의 정교한 의료대는 **제외한다**.

(8) 호르몬·제2937호의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 : spermicide)를 기본 재료로 한 피임성의 화학조제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에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커플링제로 의료용이나 수의과용에 사용하는 겔(gel) 조제품. 그 제품은 보통 다가알코올(글리세롤·프로필렌 글리콜 등), 물 및 증점제를 함유한다.

겔(gel)제품은 신체검사에서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윤활제(예: 질윤활제)·의료용·동물용 의료기구·장갑·외과의사의 손·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한다. 또한 신체와 의료기기의 커플링제로도 사용한다(예: 심전계·초음파 스캐너).

(10) 장루(腸瘻 : ostomy)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結腸瘻 : colostomy)·회장루(回腸瘻 : ileostomy)·요루 주머니(urostomy)·이들의 접착 웨이퍼(wafer)·페이스 플레이트(face plate)]

(11) 폐(廢 : waste)의 의료용품

이 호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용품(예: 유효기간의 종료)을 포함한다.

(12) 플라세보(placebo)

이 호에 분류되는 플라세보(placebo)는 외형이 의약품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고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한다. 플라세보(placebo)는 일반적으로 약학상 비활성 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연구 중인 의약품에 사용된 성분에서 활성성분을 뺀 것으로 구성된다. 이 호의 플라세보(placebo)에는 대조물질(control substance)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백신도 포함한다. 플라세보는 태블릿(tablet)·액체·주사나 패치(patch)를 포함한(그러나 한정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의약품에 사용하는 성분(첨가제)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13)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는 오로지 맹검 임상시험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시험 대상 의약품을 포함하거나 해당하는 플라세보(placebo)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하며, 그 의약품을 개별 식별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새로운 의약품 실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이중 맹검 검사를 사용한다. 어떤 주어진 이중 맹검 키트의 정확한 내용 정보, 즉 활성(active) 의약품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플라세보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키트와 함께 제공되지 않으며, 관세 목적으로도 제공되지 않는다.

키트는 오로지 제품의 안전한 운송이나 보관을 위해서만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포장(예: 온도기록기, 위변조 검출기나 냉각수 패드), 해당 필요 서류나 양식(하드 카피인지와 전자 형태인지에는 상관없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호의 플라세보나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는 승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다.

임상시험은 사람이나 동물용 약물 시험을 위한 것으로, 연구용 제품은 시험 중인 활성(活性) 성분의 의약품 형태 또는 임상시험에서 기준(reference)으로 사용하는 플라세보의 의약품 형태이다. 시험할 활성 성분에는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식물성 의약품(herbal medicinal products)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임상시험 키트는 임상시험용으로 합법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수입 당사국의 모든 해당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 물품으로서 임상 시험용으로 그 수입 물질에 대한 해당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각기 다른 구성과 형태에 기초하여 각각 다른 호(예: 제1704호, 제2106호 등)에 분류하여야 한다.

제 31 류

비 료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0511호의 동물의 피
 -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류의 주 제2호가목·제3호가목·제4호가목·주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제3824호의 배양한 염화칼륨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소자(제9001호)
2. 제310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혼합물
 -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혼합물
 -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인지 또는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 다. 염화암모늄이나 가목·나목에 열거한 물품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 라. 가목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3. 제3103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 1) 염기성 슬래그(slag)
 - 2) 제2510호의 천연 인산염으로서 하소(煨燒)한 것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 3) 과인산석회나 중과인산석회
 - 4)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건조 무수물(無水物)의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가목에 열거한 물질이 서로 혼합된 비료(플루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 다. 가목·나목에 열거한 물질(플루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4. 제3104호는 다음 각 목의 물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 1) 가공하지 않은 천연 칼륨의 염류[예: 카아닐라이트(carnallite), 카이나이트(kainite), 실바이트(sylvite)]
 - 2)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주 제1호다목의 물질은 **제외한다**)
 - 3)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나. 가목에 열거한 물질이 서로 혼합된 비료
5.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3105호로 분류한다.
6. 제3105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보통 천연이나 인조 비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을 분류한다.

그 반면에, 이 류에서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fertilise) 것이라기보다는 개량하기(improve) 위한 물질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

- (a) 석회(**제2522호**)
- (b) 이회토(泥灰土 : marl)와 부엽토(腐葉土 : leaf mould)(천연적으로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제2530호**)
- (c) 토탄(土炭 : peat)(**제2703호**)

이 류에서는 또한 종자의 발아와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 잎, 토양에 사용하는 미량(微量 : small amount) 영양소의 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예: **제3824호**).

또한, 이 류에서는 토탄(土炭 : peat)을 기본 재료로 한 것·토탄(土炭 : peat)·모래의 혼합물·토탄·점토의 혼합물을 기제로 한 것(**제2703호**)과 토양·모래·점토 등의 혼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화분용 흙과 같은 조제 식물 성장 매체(**제3824호**)를 **제외한다**. 이들 모든 제품들은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인·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 있다.

**31.01 -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a) 동물성 비료·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b) 동물성 물품·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제3103호의 뼈에서 얻은 인산석회(bone superphosphates)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들 물품이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경우에는 **제3105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구아노(guano) : 이는 해조의 배설물이나 잔재물이 누적한 것이며 특정의 섬(島)이나 해안에서 대량으로 발견된다. 질소질과 인산질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있는 황색 가루이다.
- (2) 배설물·똥·오손된 양모웨이스트·거름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
- (3)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
- (4) 분해된 구아노(guano)
- (5) 가축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품
- (6) 썩은 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그 밖의 재료로 구성된 혼합비료로서 석회 등으로 처리하여 부패를 촉진시키거나 조절한 것
- (7) 양모의 정제 잔재물
- (8) 건조한 피와 뺏가루의 혼합물
- (9)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안정화된 하수찌꺼기 : 안정화된 하수 찌꺼기는 큰 물체를 제거하기 위해 하수를 걸러 내고 자갈과 무거운 무생물 성분을 구분함으로써 얻어진다. 그 후 잔존하는 찌꺼기는 공기 건조되거나 여과가 된다. 이렇게 얻어진 안정화된 찌꺼기는 높은 비율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약간의 비료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예: 인·질소). 그러나 고농도의 그 밖의 물질(예: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찌꺼기로서 비료로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안정화된 찌꺼기는 **제외한다(제382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동물의 피(액체 상태나 건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0511호**)
- (b) 뺏가루·각분·제분·어류 웨이스트(waste)(**제5류**)
- (c) 육(肉)류·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과 펠릿(pellet)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제2301호**)·**제23류**에 열거된 그 밖의 물품(오일케이크·양조·증류박 등)
- (d) 골회·목회·이탄회(ash from peat)·석탄회(**제2621호**)
- (e) 이 호의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의 혼합물(**제3105호**)
- (f) 안정화된 하수찌꺼기와 질산칼륨이나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제3105호**)
- (g) 가축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가축 더스트(dust)·가축 가루·가축의 고운 가루(**제4115호**)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3102.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 3102.21 -- 황산암모늄
- 3102.29 -- 기타
- 3102.3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3102.4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3102.50 - 질산나트륨
- 3102.60 -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 3102.80 -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3102.9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에만 한정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혼합물 :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일부 혼합물은 “질산칼슘 비료”로 거래될 수도 있다.
-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혼합물 : 물품은 백운석(dolomite)을 질산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인지 기름(油 : oil)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요소(탄산의 디아미드)(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합성 등에도 사용한다.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이나 화학물품은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질소 함유 물질은 화학적으로 단일(제2827호에 해당하는 염화암모늄 등) 여부를 불문하고 비료로서 사용하여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 (B) 앞 (A)에서 설명된 물질의 두 가지 이상을 상호 혼합한 비료(예: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을 혼합한 비료)
- (C) 염화암모늄이나 앞에서 설명한 (A)와 (B)항에 열거한 물질과 초크·석고·그 밖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한 비료(예: 혼합이나 지지의 방법으로 질산암모늄에 상기에서 규정한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비료)
- (D) 액상비료 :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 용액으로 한 것

앞에서 설명한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C)·(D)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31.03 -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과인산석회

3103.11 -- 오산화인(P_2O_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3103.19 -- 기타

3103.90 - 기타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에만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과인산석회(단일·중·삼)**(가용성 인산염) : 단일의 과인산석회는 천연 인산염·뿔가루에 황산을 반응시켜서 얻어지며 중과인산석회·삼과인산석회는 천연 인산염·뿔가루에 인산을 반응시켜서 만든다.

(2) **염기성 슬래그(slag)**[별명 : “토마스 슬래그(Thomas slag)”·“토마스인산염(Thomas phosphate)”·“인산염의 슬래그(phosphatic slag)”·“야금의 인산염류(metallurgical phosphate)"] : 이것은 염기성이나 전로에서 인산철로부터 제강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3) 제2510호의 **천연 인산**을 하소(煨燒)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4) **오르토인산수소칼슘[건조 무수 상태에서 플루오르(fluorin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2% 이상의 것]**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으로서 건조 무수 상태에서 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2% 미만의 것은 **제2835호**에 분류한다.

위에서 설명한 광물성이나 화학물품은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아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인산물은 화학적으로 단일(**제2835호**의 인산나트륨과 같은 것)여부를 불문하고 비료용으로 사용한다하여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앞에서 설명한 (A)물품의 두 가지 이상을 상호 혼합한 비료**[위 (A)(4)의 플루오르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예: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을 혼합한 과인산석회로 구성된 비료)

(C) **앞에서 설명한 (A)·(B)의 물품**[위 (A)(4)의 플루오르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과 초크·석고·그 밖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한 비료**(예: 과인산석회와 백운석 혼합물·과인산석회와 붕사를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

위에서 설명한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C)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그 혼합물은 혼합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A)(4)에서 규정한 플루오르의 함량 제한도 상관이 없다.

31.04 -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 - 염화칼륨

3104.30 - 황산칼륨

3104.90 - 기타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에만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염화칼륨 :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만, 제3824호의 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배양한 결정(광학소자는 제외한다)과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소자(제9001호)은 제외한다.

(2)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천연 칼륨염**[카아닐라이트(carnallite) · 카이나이트(kainite) · 실바이트(sylvite) 등]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성이나 화학물품은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아도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칼륨을 함유한 제품은 비료로 사용하더라도 화학적으로 단일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836호의 탄산칼륨과 같은 것).

(B) **앞에서 설명한 (A)의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을 상호 혼합하여 만든 비료**(예: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

위에서 설명한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31.05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3105.1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3105.20 -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 3105.3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 3105.4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 3105.51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 3105.59 -- 기타
- 3105.6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 310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들의 혼합물(비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서 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비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예: 질산칼륨(제2834호)·인산칼륨(제2835호)].

(B) 복합비료와 배합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 즉 비료의 요소로서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다.

- (1) 두 가지 이상의 비료를 서로 **혼합한 것**(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 분류하지 않은 비료성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혼합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하소(煨燒)한 천연 인산염·염화칼륨
 - (b) 과인산석회·황산칼륨

- (c) 칼슘시아나미드 · 염기성 슬래그(slag)
- (d) 황산암모늄 · 과인산석회 · 인산칼륨
- (e) 질산암모늄 · 과인산석회 · 황산칼륨 · 염화칼륨

(2) **화학적 처리에 의한 것** : 예: 천연의 인산칼슘을 질산으로 처리하고 질산칼슘을 냉각과 원심력으로 분리한 후 암모니아로 용액을 중화하고 칼륨염류를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건조할 때까지 증발하여 얻어진 비료(이 비료는 때로는 니트로인산칼륨이라고 하지만 사용상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아니다)

(3) **혼합과 화학적 처리를 병행한 것**

제3102호 · 제3103호와 제3104호는 각 호에 열거된 것(질소 · 인 · 칼륨)이외의 비료 원소 중 소량의 불순물이 함유된 비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하며 ; 따라서 그러한 비료는 이 호에서 분류하는 복합비료나 배합비료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C) **그 밖의 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예:

(1) 비료질(즉 질소 · 인 · 칼륨을 함유한 것)과 비(非)비료질(예: 황)의 혼합물. 질소 · 인을 함유한 이들의 대부분은 **제3102호 · 제3103호**에 분류하며(해당 각 호 해설서 참조) 그 밖의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2) 천연의 칼륨을 함유한 질산나트륨비료,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천연혼합물

(3) 화학비료나 광물성비료와 동물성 · 식물성 비료의 혼합물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 류의 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하지 않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지만 비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예: **제2827호**에 해당하는 염화암모늄

(b) 폐(廢)산화물(**제3825호**)

또한 이 호에는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이 류의 물품도 분류한다.

제 3 2 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3203호·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유리,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 나.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 제2941호, 제3501호부터 제35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이나 그 밖의 탄닌 유도체
 - 다. 아스팔트로 만든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mastic)(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 [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extender)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distemper)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 박(箔)”이란 인쇄에 사용하는 얇은 시트(sheet)의 것(예: 서적 표지나 모자띠)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으로 된 것을 말한다.
 - 가. 금속의 가루(귀금속의 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에 부착시킨 것

총설

이 류에는 가죽류의 유연제와 탈회제를 분류한다[식물성의 유연용 추출물(tanning extract) · 합성 유연 물질이 천연 유연재료 · 인조탈회제와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류에는 또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페인트 · 요업용 착색제 · 잉크 등)도 포함한다. 바니시(vernish) · 건조제 · 퍼티(putty)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조제품도 포함한다.

제3203호 · 제3204호에 분류하는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鎔融 : fused) 석영유리 · 그 밖의 용융(鎔融 : fused) 실리카유리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된 염료나 그 밖의 착색제(제3212호)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28류**나 **제29류**에 분류한다.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 · 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의 경우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 · 특정 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해당 성분이 다음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 (i)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
- (ii) 동시에 제시되는 것 ; 그리고
- (iii)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그러나, 사용할 때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없더라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 · 바니시(vernish) · 매스틱(mastic)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32.01 -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10 - 퀘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3201.2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3201.90 - 기타

(A)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tanning extract)

이들은 주로 가죽의 유연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추출물(extract)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미세하게 가루화하거나 세분화한 식물성 재료[목재·목피·잎(葉)·열매·뿌리 등]에서 온수(때때로 산성화한다)로 추출하여 제조된다. 이 액체는 여과되거나 원심 분리된 후, 농축되고 때로는 아황산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얻어진 추출물은 액체이지만 더욱 농축시켜 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형일 수 있다. 이러한 추출물은 모두 당류·무기염류·유기산 등과 같은 물질뿐 아니라 다양한 비율의 탄닌(tannin)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갈색·황색·홍색이다.

주요 유연용 추출물(extract)은 참나무·밤나무·퀘브라초(quebracho)·파인·왓틀(wattle)(미모사)·수마크(sumach)·미로발란(myrobalan)·발로니아(vallonia)·감비어·망그로브(mangrove)·디비-디비(divi-divi) 추출물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주로 유연용 추출물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원재료(건조·파편·가루인지에 상관없다)(제1404호)
- (b) 합성유연제를 혼합한 유연용 추출물(제3202호)
- (c) 목재펠트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residual lye)(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804호)

(B) 탄닌과 그 염·에테르(ether)·에스테르(ester)·그 밖의 유도체

탄닌(탄닌산)은 식물성 유연 재료의 주요 활성 성분이며 제1404호의 식물성 원재료나 (A)에 분류하는 추출물을 에테르나 알코올로 추출하여 얻어진다. 이 호에는 또한 유기용제로 추출한 것보다 효력이 적은 오배자 추출물(물로 추출한 오배자 탄닌)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추출 공정에서 생기는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탄닌(피로갈롤과 카테콜 탄닌)을 분류한다.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오배자 탄닌(갈로탄닌산)이다.

그 밖의 탄닌에는 참나무껍질탄닌(쿠에르시탄닌산)·밤나무탄닌(캐스타니오탄닌산)·퀘브라초탄닌(quebracho tannin)·미모사탄닌 등이 포함한다.

제6부
32.01

이러한 탄닌은 모두 백색이나 황색의 무정형 가루 상태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색하며 비늘 모양이나 바늘 모양의 결정인 것도 있다. 이들은 주로 염색의 매염제(媒染劑: mordant) · 잉크 제조용 · 포도주 · 맥주의 청징(淸澄: clarification)제 · 의료 · 사진에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탄닌산염에는 알루미늄 · 비스무트 · 칼슘 · 철 · 망간 · 아연 · 헥사메틸렌테트라민(hexamethylenetetramine) · 페나존(phenazone) · 오렉신(orexine)이 있다. 탄닌(tannin)의 그 밖의 유도체에는 아세틸탄닌(acetyltannin) · 메틸렌디탄닌(methyleneditannin)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도체는 일반적으로 의약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탄닌산 귀금속 · 그 밖의 귀금속화합물(제2843호) · 제2844호부터 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되는 탄닌 유도체
- (b) 갈산(gallic acid)(제2918호)
- (c)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나 제2941호에 해당되는 탄닌산염 · 그 밖의 탄닌유도체
- (d) 합성유연제(천연 유연제와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202호)
- (e) 제3501호부터 제3504호까지에 해당되는 단백질의 탄닌산염 · 그 밖의 탄닌유도체, 예를 들어 탄닌산 카세인(casein)(제3501호) · 탄닌산 알부민(제3502호) · 탄닌산 젤라틴(제3503호)

32.02 - 합성 유기유연제 · 무기유연제 · 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호소계 조제품

3202.10 - 합성 유기유연제

3202.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유연제(tanning product)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닌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하는 유연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합성 유기유연제[“신탄(syntan)”이라고도 한다]

이들 물품은 옅은 색으로 가죽을 유연하는데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외피에의 침투를 돕기 위하여 천연 유연제와 혼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방향족(芳香族)신탄: 예를 들면, 포름알데히드와 페놀-, 크레졸-, 나프탈렌 술폰산과의 축합물; 고분자량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술폰화물; 폴리술폰아미드·폴리히드록시-폴리아릴술폰-술폰산)
- (2) 염화알킬술폰[“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합성유연제(oilbased synthetic tanning substance)”라고도 한다]
- (3) 수지성 유연제(전부나 대부분이 수용성이다): 이러한 물품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디시안디아미드·요소·멜라민과의 축합물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B) 무기유연제나 “광물성 유연제(mineral tanning)”(예: 크롬염·알루미늄염·철염·지르코늄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A)와 (B)에 기술된 유연제는 상호 혼합되거나[예: 크롬이나 알루미늄염과 혼합한 유기 신탄(organic syntan)] 천연 유연제와 혼합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합성 유연제로서의 주용도 외에 부차적인 목적[예: 균염(均染)·표백]을 갖는 물품도 포함한다.

(Ⅱ) 인조탈회제(artificial bate)

이것은 생피의 섬유 내 단백질과 일반적으로 석회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고 가죽을 유연하게 하며 다음 공정의 유연제의 작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복합조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선된 효소(enzyme)나 판크레아틴(pancreatin)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되며 특정의 탈석회물·미강(米糠 : bran)·목재 가루(木粉 : wood flour) 등과 같은 증량제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 residual lye)(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804호**)
- (b) 완성가공제·염색 촉진용·염색 고착용의 염색캐리어·가죽공업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끝 마무리제·매염제(媒染劑 : mordant) 등의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주로 유연제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제3809호**)

32.03 - 식물성 ·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 · 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 · 껍질 · 뿌리 · 종자 · 꽃 · 이끼 등) · 동물성 재료를 물 · 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 · 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그 밖의 물질(당류 · 탄닌 등)을 함유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식물성 착색제와 염색용 추출물(extract)** : 로그우드(logwood)(해마테인 · 해마톡실린 등) · 황색목재(페스틱 · 큐바 · 탐피코목 등) · 적색목재(피남부코 · 리마 · 브라질 목 등) · 백단향(白檀香 : sandalwood) · 케시트론 · 블랙커취(아카시아 카데츄) · 아나토 · 매더 · 알케나 · 헤나 · 튜머릭 · 페르시안베리 · 사플라우어 · 사프론 등에서 얻어지는데 ; 이 호에서는 특정의 이끼(지의류)에서 조제된 오르킬과 리트머스를, 포함하며 ; 여러 종류의 포도껍질에서 나오는 오에닌 ; 나트륨엽록소 · 구리엽록소 · 크산토피콜과 같이 서양쐐기풀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식물에서 추출되는 엽록소도 포함하며 ; 너도 밤나무 껍질 및 콜크와 같은 식물성 재료의 부분 분해에 의하여 조제되는 모조 만다이크 브라운 ; 인디고페라(*Indigofera*)속[주로 인디고페라 텅크토리아(*Indigofera tinctoria*)]의 식물에서 얻는 천연 인디고(Indigo)를 포함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암청색의 가루 · 페이스트(paste) · 케이크 · 럼프(lump) 등의 상태이다.
- (2) **동물성 착색제** : 예: 코치닐 엑스(cochineal extract)(일반적으로 코치닐 곤충을 산성의 물이나 암모니아 용액으로 추출하여 얻어진다). 커미즈(kermes)(커미즈 곤충으로부터 얻어지는 적색의 착색추출물) ; 세피아(sepia)(오징어종의 묵낭에서 얻은 갈색상착색제) ; 셸락(shellac)으로부터 조제되는 착색 추출물[대표적인 것은 락다이(lac-dye) ; 천연 진주색 안료로서 어류의 비늘로부터 얻어지며 주로 구아닌과 히포크산틴으로 조성되는 결정 모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 ·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는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 데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나 착색 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식물성 기름에 용해한 아나토(annatto)용액 : 일부 나라에서 버터 착색용으로 사용한다.
- (ii) 천연 진주색 안료로서 물 · 물과 수용제의 혼합물로 조성된 매질(媒質 : medium)에 분산된 것 : 본 물질은 때때로 “필 에센스(pearl essence)”라 하며 에큐어스코팅(aqueous coating)이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의 마지막 문장에서 규정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카본 블랙(carbon black)(**제2803호**)
- (b) 실제로 그 염색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예를 들어, 모린·해마틴·해민)(**제29류**)
- (c) 합성 유기착색제(**제3204호**)
- (d) 동물성 천연착색제·식물성 천연착색제를 기본 재료에 고착시켜 얻어진레이크 안료[예: 카민레이크·로그우드레이크(logwood lake)·황색목재·적색목재레이크](**제3205호**)
- (e)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그 밖의 착색제(**제3212호**)
- (f) 아이보리블랙(ivory black)·그 밖의 수탄(獸炭 : animal black)(**제3802호**)

32.04 -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2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3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4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5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6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7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8 -- 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3204.19 --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204.2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3204.90 - 기타

**(I)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조제품**

합성 유기착색제는 일반적으로 콜타르(coal tar) 증류에서 나온 오일이나 그 밖의 물품에서 얻어진다.

특히, 이 호에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A) 혼합하지 않은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와 그 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않은 물질[무수(無水) 황산나트륨 · 염화나트륨 · 덱스트린(dextrin) · 전분 등]로 희석시킨 합성 유기착색제. 염료의 침투와 고착을 배강시키기 위한 소량의 계면활성제의 첨가는 착색제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합성 유기착색제는 **제3212호**에 분류한다(해당 호의 해설서(C) 참조).

- (B) 상호 혼합한 여러 가지 형태의 합성 유기착색제
- (C) 합성 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 중에 농후하게 분산한 것 : 이러한 분산물은 보통 소형의 관 상태나 럼프(lump) 상태이며 대체로 고무·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한다.
- (D) 합성 유기착색제와 비교적 다량의 계면활성제 또는 그 밖의 유기결합제와의 혼합물 : 이들은 대량의 플라스틱 등을 착색하거나 직물의 날염용 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하며 보통 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 (E) 어떤 재료의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거나 착색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의 끝에서 규정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합성 유기착색제(염료나 안료 색소인지에 상관없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니트로소(nitroso)·니트로(nitro) 화합물
- (2) 모노-(mono-)·폴리아조(polyazo) 화합물
- (3) 스틸벤(stilbene)
- (4) 티아졸(thiazole)(예: 티오플라빈)
- (5) 카르바졸(carbazole)
- (6) 퀴논이민(quinoneimine)[예: 아진(인들린·니그로신·유로딘·사프라닌 등)·옥사진(갈로시아닌 등)·티아진(메틸렌블루 등) ; 인도페놀·인다민]
- (7) 크산텐(xanthene)(피로닌·플루오레신·이오진·로다민 등)
- (8) 아크리딘(acridine)·퀴놀린(quinoline)(예: 시아닌·이소시아닌·크립토시아닌)
- (9) 디-(Di-)·트리페닐메탄(triphenylmethane)(예: 오라민·폭신)
- (10) 히드록시퀴논(hydroxyquinone)·안트라퀴논(anthraquinone)(예: 알리자린)
- (11) 술폰화 인디고(sulphonated indigoid)

- (12) 그 밖의 건염(建染 : vat dye) 염료 · 안료(예: 합성 인디고) · 그 밖의 황화염료 · 안료 · 인디고솔(indigosol) 등
- (13) 인텅스텐 그린(phosphotungstic green) 등(제3205호 해설 제3항 참조)
- (14)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일지라도)과 이들의 금속화합물 [이들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를 포함한다]
- (15) 합성에 의하여 얻어진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예: 베타-카로틴, 8'-아포-베타-카로티날, 8'-아포-베타-카로틴산, 에틸 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 메틸 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와 칸탁산틴)

특정의 아조(azo) 착색제는 섬유 그 자체에 불용성인 아조(azo)염료를 생성하는 안정화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물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색과정 중에서 동일한 착색이 되도록 하는 커플러(coupler)를 분리하여 섬유에 염색이 되는 분리 디아조염(표준 농도로 안정화나 희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제29류)**.

이 호에는 또한 염료 그 자체는 아니고 착색제를 제조할 때 중간단계에서 얻어지는 염료 중간체는 **제외한다**. 이 염료중간체(예: 모노클로로아세트산 · 벤젠술폰 · 나프탈술폰산 · 레조르시놀 · 클로로니트로벤젠 · 니트로 · 니트로소페놀 · 니트로소아민 · 아닐린 · 니트로화 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벤지딘 · 아미노나프톨술폰산 · 안트라퀴논 · 메틸아닐린)는 **제29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염료 중간체는 이 호에 분류하는 특정의 조(粗 : crude)물품(예: 푸타로시아닌으로서 화학적으로 “완성(finished)”되어 있으며 최적의 착색력을 얻기 위하여 간단한 물리적 공정만을 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합성 유기착색제는 물에 녹는 것과 물에 녹지 않는 것이 있다. 합성 유기착색제는 대부분 천연 유기착색제를 대신하여 직물 염색용 · 직물 날염용 · 가죽 염색용 · 종이 염색용 · 목재 염색용에 사용한다. 또한 레이크 안료(제3205호) ·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 · 제3212호 · 제3213호의 착색제 · 제3215호의 잉크의 제조용 · 플라스틱 · 고무 · 왁스 · 오일 · 사진유제 등의 착색에 사용한다.

이 중 특정의 것은 실험실 시약이나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실제 염색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아줄렌(제2902호) ;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릭산) · 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제2908호) ;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제2921호) ; 메틸오렌지(제2927호) ; 빌리루빈 · 빌리베르딘 · 포르피린(제2933호) ; 아크리플라빈(제3824호)]

(II)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이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합성 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1) **형광증백제로 사용하는 종류의 유기물** :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시 청색광을 내며, 백색 물품의 외관상 백색도를 높여주는 유기 생산물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스틸벤(stilbene) 유도체로 되어 있다.
- (2)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유기물** : 광선작용으로 형광이나 발광효과를 낳게 하는 합성생산물이다.

이러한 물품의 일부는 착색제로서의 특성도 있다. 이러한 루미노퍼의 예로서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로다민 비(rhodamine B)가 있으며 적색형광을 내고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이다.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대부분의 유기물(예: 디히드록시테레프탈산디에틸과 살리실알다진)은 착색제가 아니고 착색 안료에 그 광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가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하지만 발광형이 아닌 것은(예: 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것)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9류)**. 따라서 고무 기포제로서 사용하는 종류의 살리실알다진(salicylaldazine)은 **제2928호**에 분류한다.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유기물끼리 혼합되었거나, 합성 유기착색제와 혼합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무기안료와 혼합된 것은 **제외한다(제3206호)**.



[소호해설]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적용이나 용도에 따라 세분된다. 이들 소호의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분산성 염료 : 대체로 물에 녹지 않으며 비이온성 염료로서, 수분산물로부터 소수성(疏水性 : hydrophobic) 섬유에 이용된다. 이들은 폴리에스터·나일론·그 밖의 폴리아미드·초산셀룰로오스·아크릴 섬유에 사용하고 특정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s)의 표면염색용으로 사용한다.

산성 염료 : 물에 녹는 음이온성 염료로서 나일론·양모·견(silk)·모다아크릴(modacrylic) 섬유·가죽에 이용된다.

매염(媒染 : mordant) 염료 : 물에 녹는 염료로서 염료를 직물 섬유에 고착하게 하는 매염제(媒染劑 : mordant)(예: 크로뮴산염)가 필요한 염료이다.

염기성 염료(basic dye) : 물에 녹는 양이온성 염료로서 모다아크릴(modacrylic)·변성나일론·변성폴리에스테르(ester)섬유·미표백지의 염색에 이용된다. 염기성 염료는 본래 견(silk)·양모·탄닌 매염(媒染 : mordant)한 면의 염색에 사용하였으며 여기서는 색조의 명도(brightness of shade)가 염색견뢰도(染色牽牢度 : colour-fastness) 보다 중시되었다. 일부 염기성 염료는 생물학적 활성도(activity)가 있으며 방부제로서 의약용에 사용한다.

직접 염료(direct dye) : 물에 녹는 음이온염료로서, 전해질 존재하의 수용액 상태에서 셀룰로오스섬유에 직접 염착할 수 있다. 이들은 면·재생셀룰로오스·종이·가죽염색용으로 사용하며, 이보다 적은 정도이긴 하지만 나일론 염색용에도 쓰인다. 염색견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염료로 염색한 섬유는 흔히 사후처리를 하는데, 그 예로는 원상태에서 디아조화와 결합·금속염에 의한 킬레이트·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처리 등이 있다.

건염(建染)염료(vat dye) : 물에 녹지 않는 염료로서 이것은 알칼리성 배스(bath)에서 수용성 루코형으로 환원된다. 그러한 모양의 것은 셀룰로오스섬유에 주로 사용하며, 그런 후에 이들은 수불용성의 착색된 케토형으로 재 산화된다.

반응성 염료(reactive dye) : 관능기반응에 의해 이들 자체가 공유결합의 형태로 섬유분자에 섬유·보통 면·양모·나일론에 염착된다.

안료(pigment) : 합성 유기착색제로서 이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정형이나 미립형을 유지한다[반대로 염료는 용해나 기체화에 의해서 이들 결정구조를 상실한다(비록 이들이 염색과정의 나중 단계에서 결정구조를 다시 얻을지라도)]. 이들은 위에서 규정한 일부 염료의 불용성 금속염을 포함한다.

소호 제3204.19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제32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혼합물
- **유용성 염료(solvent dye)** : 이는 유기 용제에 용해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나일론·폴리에스테르(polyester)·아크릴섬유와 같은 합성섬유에 이용되고, 또한 가솔린·바니시(vernish)·물감·잉크·왁스 등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합성 유기착색물질의 일부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도포제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이들은 제시하는 상태에 따라서 건염(建染) 염료나 안료의 두 가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소호 제3204.15호의 건염(建染) 염료로 분류한다.
-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8호까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특정 소호에 잠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소호 중 가장 마지막 소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8호까지와 잔여의 소호 제3204.19호 중에서 어느 특정 하나의 소호에 잠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그 특정 소호에 분류한다.

합성 유기물질의 혼합물과 그러한 혼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혼합한 것은 그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 서로 다른 소호(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혼합한 것은 잔여소호인 제3204.19호에 분류한다.

종종 “백색 염료(white dye)”라 하는 형광증백제(fluorescent brightening agent)는 소호 제3204.20호에서 보다 더 협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서는 제외한다.

32.05 -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레이크 안료(colour lake)는 (동물성·식물성) 천연**착색제**·합성 유기**착색제**(물에 녹는 것인 지에 상관없다)를 일반적으로 광물성 기본 재료(황산바륨·황산칼슘·산화알루미늄·차이나 점토·활석·규석·규산질토·탄산칼슘 등)에 고정시켜 얻어지는 물에 녹지 않는 조제품이다.

기본 재료에 **착색제**를 고정시켜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착색제를 기본 재료 위에 탄닌(tannin)·염화바륨 등의 침전제로 침전시키든가, 착색제와 기본 재료를 공침(共沈 : co-precipitation)시킨 것
- (2) 착색제 용액으로 기본 재료를 염색한 것
- (3) 불용성 착색제에 불활성 기본 재료를 기계적으로 직접 혼합한 것

레이크 안료는 광물성 원소가 분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물에 녹지 않는 합성 유기착색제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합성 유기착색제는 그 금속염의 형태로 잘 녹지 않게 된다(예: 술폰화 염료의 칼슘염, 염기성 염료와 인·몰리브덴·텅스텐의 착산과의 염)(**제3204호**).

레이크 안료는 대부분 아조(azo)염료·안트라퀴논(anthraquinone)에서 유도된 건염(建染) 염료·알리자린 염료 등 산화에 높은 저항성이 있는 합성 유기착색제(**제3204호**)에서 제조되며 주로 인쇄용 잉크·벽지·유성페인트 조제용에 사용한다.

레이크 안료는 동물성·식물성 유기착색제(**제3203호**)로도 제조되며 특히 다음의 것이 있다. 즉 코치닐(cochineal) 카민레이크[일반적으로 코치닐(cochineal) 추출물 수용액을 명반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며 주로 수채화 색의 제조·시럽·과자류·리큐르 등의 착색용에 사용한다] 로그우드(logwood)·황색우드·적색우드 레이크(lakes) 등이 있다.

이들 물품은 대개 가루 상태이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고무·가소제·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에 레이크 안료를 농축 분산한 것을 포함한다. 이들 분산물은 소형의 판 모양이나 덩어리(lump)상태이며 대체로 고무·플라스틱 등의 착색 원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특정 재료를 착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거나 조제 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의 끝에 규정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서는 일본 래커(Japan lacquer) 또는 중국 래커(Chinese lacquer)를 **제외한다**(**제1302호**).

32.06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3206.11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 3206.19 -- 기타
- 3206.2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 3206.41 --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3206.42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토폰(lithopone)·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 3206.49 -- 기타
- 3206.5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A)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나 광물성의 착색제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 에스컬러[하소(煨燒)하거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2530호 해설 참조)
- (b) 화학적으로 단일인 무기의 착색제(예: 염기성 탄산염 ; 철·납·크로뮴·아연의 산화물 ; 아연·수은의 황화물 ; 크로뮴산납(제28류) ; 슈바인푸르트그린(아세트아비산동)(제2942호))
- (c) 금속플레이크(flake)·금속가루(제14부·제15부)

이 호에 해당하는 착색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황산바륨이나 그 밖의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 특정한 특성 때문에 안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특별히 제조된 이산화티타늄은 다른 호(예: 제3815호·제3824호)에 분류한다. 혼합되지 않고 표면처리도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은 제2823호에 분류한다.
- (2)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 여기에는 크로뮴산납과 황산납과 같은 그 밖의 무기물과의 혼합물로 조성된 황색안료·산화크로뮴과 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여 조성된 녹색안료를 포함한다.

- (3) **군청(群靑 : ultramarine)** : 종전에는 라피스 라주리(lapis lazuli)에서 얻어진 복합 화합물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규산염류 · 알루미늄산염류 · 탄산나트륨 · 황 등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인공적으로 만든다. 녹색 · 담홍색 · 자색 군청(群靑)은 이 호에 분류하나 때로는 황색 군청(群靑)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비혼합 크로뮴산염류는 **제외한다(제2841호)**.
- (4) **황화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토폰(lithopone)과 그 밖의 안료** : 황화아연과 황산바륨(중정석)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백색 안료와 같은 것
- (5)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한 안료**. 예: 황화카드뮴과 황산바륨의 혼합물로 된 황색 안료 · 황화카드뮴과 셀렌화카드뮴의 혼합물로 된 카드뮴 레드
- (6) **육시안산 철염(페로시아나이드와 페리시아나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프루시안 블루(베를린블루)와 그 밖의 안료** : 프루시안 블루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페로시아나화 제이철로 되어 있으며 알칼리 페로시아나이드를 제일철염과 같이 침전시킨 후 하이포염소산염으로 산화시켜서 얻어진다. 무정형의 청색 고체로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많은 안료의 조제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에는 미네랄블루[황산바륨과 고령토(kaolin)를 첨가] · 밀로리그린 · 잉그리쉬그린(크로뮴엘로우, 때로는 황산바륨을 첨가) · 징크그린(크로뮴산아연첨가) · 칼라잉크화합물(옥살산첨가)이 있다. **턴블블루(Turnbull's blue)**는 페로시아나화 제일철로 되어 있으며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고 그 자체나 혼합물로 되어 있다.
- (7) **광물성 블랙(제2530호 · 제2803호에 열거된 블랙을 제외)**, 예:
- (a) **셰일블랙(shale black)**[여러 가지의 규산염과 탄소의 혼합물로서 역청질의 혈암을 부분 하소(煨燒)하여 얻는다]
- (b) **실리카블랙(silica black)** : 석탄과 키질구어(kieselguhr)의 혼합물을 하소(煨燒)하여 얻는다.
- (c) **“알루블랙(alu black)”**으로 알려진 제품 : 산화알루미늄과 탄소의 혼합물로서 보크사이트와 콜타르피치(coal tar pitch) · 그리스의 혼합물을 하소(煨燒)하여 얻어진다.
- (8) 소량의 합성 유기염류로 색상이 선명하게 착색된 **어스컬러**[상호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색상을 선명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제2530호**에 해당된다(관련 주 해설 참조)].
- (9) **용해성 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과 그 유사품** : 일반적으로 제2530호의 어스컬러[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 · 콜로뉴어스(Cologne earth) · 카셀어스(Cassel earth) 등]을 암모니아나 수산화칼륨용액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 (10) **코발트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예: 세룰리안블루)
- (11) **광석을 미분으로 한 안료**(예: 일메나이트)
- (12) **아연회(zinc grey)**(극히 불순한 산화아연)

(13) **합성 진주광택 안료**(즉, 무기의 진주광택의 안료)

- 예: (a) 산화염화비스무트(유기계면활성제가 소량 첨가된 것) ;
(b) 운모(산화염화비스무트 · 이산화티타늄 ·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철로 도포한 것)

이들은 여러 가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다.

유기성의 착색제가 첨가된 무기안료는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업공업용 색소 · 안료류(제3207호 주 해설 참조) ·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 · 제3212호의 색소 · 페인트 · 에나멜 · 래커(lacquer) · 제3213호의 화가용 · 학생용 · 오락용 물감과 인쇄용 잉크(제3215호에 분류)제조에 주로 사용하는 일차 물질이다.

위에 설명한 착색제 · 제2530호 · 제28류의 착색안료 · 금속플레이크(flake) · 금속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특정 재료를 착색하거나 다음과 같은 모양의 조제 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 (I) 플라스틱 · 천연고무 · 합성고무 ·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 · 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 물질이나 고무 등을 원료 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한다.
- (II) 비교적 다량의 계면활성제 · 유기결정제와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 것. 이 혼합물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등을 착색하거나, 섬유염 염 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보통 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의 끝에 규정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착색용 디스템퍼(distemper)도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유성페인트 익스텐더(extendor)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예:

- (a) 고령토(제2507호)
(b) 탄산칼슘(제2509호 · 제2836호)
(c) 황산바륨(제2511호 · 제2833호)
(d) 규조토(제2512호)
(e) 슬레이트(slate)(제2514호)
(f) 백운석(제2518호)
(g) 탄산마그네슘(제2519호 · 제2836호)

- (h) 석고(제2520호)
- (ij) 석면(제2524호)
- (k) 운모(제2525호)
- (l) 활석(제2526호)
- (m) 방해석(Iceland spar)(제2530호)
- (n) 수산화알루미늄(제2818호)
- (o) 앞에서 설명한 (a)부터 (n)까지에 규정한 두 가지 이상 물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3824호)

**(B)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물은 가시나 비가시의 방사선(태양광선·자외선·음극선·X선 등)의 작용 하에 발광효과(형광·인광)를 일으키는 물품이다.

이들 물품의 대부분은 은·구리·망간과 같은 “활성(activating)”물질이 극소량으로 존재함으로써 활성화된 금속염류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은·구리로 활성화된 황화아연·구리로 활성화된 황산아연과 망간으로 활성화된 아연 베릴륨 규산염이다.

그 밖의 것은 활성화제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극히 특수한 결정구조를 주는 처리로 인하여 발광성이 생기는 금속염으로 되어 있다. 이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며, 다른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텅스텐산칼슘과 텅스텐산마그네슘이 있다. 동일한 화합품으로서 비발광의 것(불순한 것·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것)은 **제외한다(제28류)**. 따라서 시약으로 사용하는 “무정형(amorphous)”의 텅스텐산칼슘은 **제2841호**에 분류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 생산품은 간혹 자기발광성을 나타내는 미량의 방사성염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로 간주하며, 방사능이 그램당 74벵크렐(그램당 0.002 마이크로 큐리)을 초과하면 **제2844호**에 분류한다.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 생산품의 상호혼합물(예: 구리로 활성화된 황화아연에 구리로 활성화된 황화아연카드뮴을 혼합한 것)·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 생산품과 무기착색제(제28류나 앞에서 설명한 (A)에 해당)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루미노퍼는 발광도료의 조제와 TV스크린의 도포·전류진동계·방사선사진·방사선투시·레이더장치·형광 등에 사용한다.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열거된 물품(예: 산화이트륨과 산화유로퓸의 혼합물)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든,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호에서 **제외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3206.19호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의 함유량이 80% 미만인 조제품에는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plasticisers)에 농축된 분산물[일반적으로 매스터배취(master-batches)로 알려져 있으며 대체로 플라스틱·고무 등을 착색하는데 사용한다]을 포함한다.

32.07 -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 · 법랑 · 유약 · 유약용 슬립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공업 ·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3207.10 -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3207.20 - 법랑과 유약 · 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3207.3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 3207.4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요업(도자기 · 도기 등)공업 · 유리공업 · 금속제품의 착색이나 완성용의 조제품을 분류한다.

- (1)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opacifier)와 조제 착색제** : 산화물(안티모니 · 은 · 비소 · 구리 · 크로뮴 · 코발트 등) · 염류(플루오르화물 · 인산염 등)를 용제 또는 그 밖의 물질첨가하거나 하지 않고 열처리하여 제조된 건조 혼합물이며 사용 후 섭씨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된다. 이 물질은 요업 배소과정에서 착색된 또는 불투명한 표면을 생성시키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유약이나 에나멜에 혼합될 수 있으며 유약을 칠하기 전에 도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 (2) **법랑(琺瑯 : vitrifiable enamel)과 유약(glaze)** : 실리카(silica)에 다른 물질(장석 · 고령토 · 알칼리류 · 탄산나트륨 · 알칼리토류 금속화합물 · 산화연 · 붕산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가열로 유리화하여 윤택이 없든 있든 간에 평활한 표면을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구성 성분의 일부는 예비공정에서 용해되고 가루 상태 프리트(frit) 모양의 혼합물로 존재한다 (아래 참조).

이것은 투명(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하거나, 유백제(乳白劑 : opacifier)나 안료를 첨가하여 불투명하게 되고 ; 때로는 티타늄이나 산화아연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여 소성 후 냉각하면 장식적인 결정효과를 내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법랑과 유약은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이나 알갱이 상태이다.
- (3) **유약용 슬립(slips)** : 도자기에 전체나 무늬 모양으로 도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점토를 기본재료로 한 반액상의 페이스트(paste)로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소성(燒成 : firing) 전이나 제1차 예비 소성(燒成) 후에 사용한다.
- (4)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 : 도자기나 유리제품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그 밖의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이나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금 · 은 알루미늄 · 크로뮴 러스터(lustre)이다.
- (5)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가루 상태 · 알갱이 상태 · 플레이크(flake)상태의 여러 가지 유리[법랑 · 용융(鎔融 : fused)된 석영 · 그 밖의 용융(鎔融 : fused)된 실리카(silica)로 만든 유리를 함유하며, 착색이나 은백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은 요업·유리·금속제품은 물론 그 밖의 목적용 도포제의 조제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프리트(frit)는 앞에서 설명한 (2)항의 법랑(珐瑯) 조제용에 사용한다. 유리가루와 유리알갱이는 때로는 실험실용의 원반·유리관 등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한다.

법랑(珐瑯)은 보통 전기부품의 절연용에 사용한다(전등용 접촉단자).

그 밖의 여러 가지 유리 가루는 연마용·염서의 장식용·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착색 유리제품의 제조용에 사용한다.

위 (5)항의 물품이 가루 상태·알갱이 상태·플레이크(flake)상태 이외의 다른 모양일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 하며 보통 **제70류**에 분류한다. 법랑과 에나멜 유리의 덩어리(**제7001호**)·에나멜 유리의 판·막대(stick)·관(**제7002호**)·영화용 스크린·도로 표지용을 도포하는데 사용하는 구(球)형의 소립자(**제7018호**)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32.08 -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 3208.10 -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3208.2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3208.90 - 기타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유기안료·레이크 안료), 금속 플레이크(flake)나 금속 가루를 전색제[결합제가 비수(非水) 매질(媒質 : media)에 분산되거나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그 밖의 아크릴 중합체·알키드(alkyd)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비닐중합체·실리콘·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 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셀룰로오스나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film-producing agent)이다.

그 밖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다른 물질, 예를 들면, 건조제(주로 코발트·망간·납·아연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농화제(알루미늄비누와 아연비누)·계면활성제·희석제·충진제(황산바륨·탄산칼슘·활석 등)와 피막방지제(예: 부타논 옥심)가 전색제에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용액 희석형의 페인트에 사용하는 용제(溶劑 : solvent)와 희석제는 휘발성의 액체[예: 백정·톨루엔(toluene)·검(gum)·우드·황산 테레빈유·합성용제의 혼합물 등]이며 이들은 고체의 결합제를 용해하여 페인트에 적당한 유동성을 주어 도포하기 쉽게 첨가된 것이다.

전색제가 바니시(vernish)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

용제(溶劑) 희석제와 페인트·에나멜의 원료 배합비는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몇 종류의 안료와 몇 종류의 결합제를 함유하고 있다. 이 물품은 건조 후 도포된 물체의 표면에 끈적끈적하지 않고 불투명한 착색피막을 형성하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

(B)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이 호의 바니시(vernish)와 래커(lacquer)는 표면보호나 장식용의 액상 조제품이며 합성 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그 밖의 섬유소 유도체·노보락(novolac)·그 밖의 페놀수지·아미노수지·실리콘수지 등]를 기본 재료로 하며 용제(溶劑 : solvent)와 희석제(thinner)를 첨가하여 만든다. 이들은 광택이나 무광택의 건조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비교적 단단하고 다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매끄러운 연속성 필름을 형성한다.

이들 물품은 해당 혼합물에 가용성인 종류의 착색제를 첨가하여 착색할 수 있다[페인트와 에나멜에서는 이 착색제를 안료라 부르며 매질에 녹지 않는다-위(A) 참조].

*
* *

페인트(paint)·바니시(vernish)와 래커(lacquer)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브러시나 롤러를 이용하며, 공업적 용법에는 분무·침액(dipping)과 기계식 도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사용할 때 희석할 수 있게 만든 바니시** : 이들 바니시는 소량의 용제(溶劑 : solvent)에 녹인 수지와 바니시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성분(예: 피막 방지제·3차 변성제·건조제)으로 조성된 물품이다. 이러한 바니시(2차성분도 용액 상태로 되어 있다)는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과는 구별되는 바, 상응하는 2차성분이 두 가지 타입의 용액에 있어서의 화학적 특성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 (2) **광학 경화 바니시(radiation-curable vernish)** : 올리고머(oligomer)[즉,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 2·3·4의 중합체(polymer)]와 가교 단량체(cross-linking monomer)(휘발성 용제에 담겨 있고, 광개시제가 첨가된 것인지는 상관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그 밖의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溶劑 : solvent)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 이들은 바니시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사진용 에멀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은 **제3707호**에 분류한다.
- (3) **아래의 (C)에 열거된 중합체의 용액으로 된 바니시(vernish)** : 즉,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용액은 용제(溶劑 : solvent)의 중량에 관계없이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예를 들면, 안티스킨닝제(anti-skinning agents)·변성제·건조제와 같이 해당 용액을 전적으로 바니시로 사용하는 데 알맞게 해주는 첨가제를 함유한다.

이 부분에는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아래 (C) 참조).

(C) 제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성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을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한다.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반응 억제제·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 agent)(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

-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물품 역시 용제(溶劑)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한다.

“휘발성 유기용제(volatile organic solvent)”라는 표현은 비교적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용제 [예: 터펜틴(turpentine)]도 포함한다.

*
* *

위의 (B)의 끝에서 두번째 절에 묘사된 조제품과 유사한 조성의 글루(glue)나 내용량 1kg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된 글루는 **제외한다(제3506호)**.

이 호에서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벽·바닥 등에 사용하는 표면처리제로서 고비율의 충전제가 첨가된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보통 매스틱(mastic)과 같이 주걱·흙손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물품(**제3214호**)
- (b) 페인트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으나 페인팅에 적합하지 않은 인쇄용 잉크(**제3215호**)
- (c) **제3304호** 해설에 규정한 형태로 된 손톱에 칠하는 바니시(vernish)류
- (d) 주 성분이 안료(pigment)·결합제(binder)·용제(溶劑 : solvent)로 구성되어 있고 소매용 포장으로 된 것으로서, 타자로 찍은 원고·손으로 쓴 문서·사진복사·오프셋(offset) 인쇄의 마스터·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과 등사원지 수정제로 사용하는 소매포장의 섬유소 바니시 등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기호나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정액(**제3824호**)
- (e) 콜로디온(collodion)[용제(溶劑)의 비율에는 상관없다](**제3912호**)

32.09 -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9.90 - 기타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결합제(binder)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유기안료·레이크 안료)와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액이다. 페인트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면활성제와 보호 콜로이드가 첨가된다. 이 호에서 바니시(vernish)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결합제에 용해되는 착색제를 포함하는 것도 있다.

필름을 생성하는 결합제는 중합체, 즉,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수지·폴리(비닐아세테이트)·폴리(비닐클로라이드)·부타디엔(butadi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수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은 물이나 물과 수용성 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벽·바닥 등에 사용하는 표면처리제로서 고비율의 충전제가 첨가된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보통 매스틱(mastic)과 같이 주걱·흙손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물품(**제3214호**)
- (b) 페인트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으나 페인팅에 적합하지 않은 인쇄용 잉크(**제3215호**)

32.10 - 그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이 호의 페인트는(에나멜 포함)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건성유(drying oil)(예로서 아마인유)(변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는 천연 수지(resins)에 안료를 첨가하여 수성·비수성(非水性 : non-aqueous) 매질(媒質 : media)에 용해·분산된 것
- (2) 모든 액상결합제(any liquid binder)(합성되거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포함한다) : 경화제(硬化劑 : hardener)와 안료는 함유하나 특정 용제(溶劑 : solvent)나 그 밖의 매질(媒質)을 함유하지 않는 것
- (3) 고무(합성고무를 **제외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페인트로서 안료를 첨가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용해되거나 분산된 것, 수성 매질(媒質) 분산한 것. 이러한 유형의 페인트는 유연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얇게 칠하는데 사용한다.

(B)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이 호의 바니시(vernish)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유성 바니시(oil vernish)** : 필름 생성 성분이 건성유(예: 아마인유)이거나 건성유에 락·천연 검(gum)·천연 수지를 혼합한 것
- (2) **락·천연 검(gum)·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와 래커(lacquer)** : 주로 락·천연 검·천연 수지[셀락(shellac)·코팔·로진(rosin)·담마 등]를 알코올[스피릿(spirit) 바니시(vernish)]·검·우드·황산터펜틴·백정·아세톤 등에 용해되거나 분산액으로 조성된다.
- (3) **역청질·피치(pitch)·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경우에 따라서 흑색 칠·흑색 바니시 등으로 알려져 있다)(역청 등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와 제 2715호의 특정혼합물과의 구별은 그 호의 해설서 **제외**규정(e) 참조)
- (4) **용제(溶劑 : solvent)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 바니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a) 액체상태 플라스틱(보통 에폭시수지나 폴리우레탄)과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라 불리는 필름 생성 부분으로 된 바니시 : 특정 바니시에서 경화제(硬化劑)를 사용할 때 첨가하며 그 경우 두 가지 성분들은 각각의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이들 용기들은 하나의 패키지에 포장될 수도 있다.
 - (b) 수지만으로 된 바니시(single resin) : 사용할 때의 피막형성은 경화제(硬化劑 : hardener)의 첨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열이나 대기 중의 수분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c) 올리고머(oligomers)[즉,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 2·3·4의 중합체(polymer)]와 가교 단량체(cross-linking monomers)로 된 바니시(vernish)(광개시제가 있는 지에 상관없다.) :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그 밖의 복사선에 의해 용제에 녹지 않는 망상 구조(단단하고 건조한 피막)로 경화되어 진다.

이들은 바니시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a)·(b)에 열거된 물품은 **제39류**에 분류하며 (c)에 열거된 물품과 사진용유화제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은 **제3707호**에 분류한다.

(5) 고무(합성고무는 제외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와 래커(lacquer) : 비수 매질(媒質 : media)에 분산되거나 용해된 것·수용성 매질(媒質 : media)에 분산된 것으로서, 결합물질에 용해될 수 있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도 있다. 여기에서 규정한 바니시는 이들을 단독으로 바니시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그 밖의 성분을 반드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들 물품은 보통 **제40류**에 해당한다.

(C) 디스템퍼(distemper)(신발류 크리닝의 백악용을 포함한다)와 가죽의 완성이공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 수성안료

(1) **디스템퍼(distemper) :** 주로 가죽 글루(glue)나 카세인(casein)과 같은 결합제를 극소량 첨가한 착색제나 광물성물질(예: 호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전제·살균제·방부제가 혼합된 것도 있다.

디스템퍼는 교질백색안료·카세인 디스템퍼(casein distemper)·규산염 디스템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나·페이스트(paste) 상태나 유화 상태로 제시하는 수도 있다.

(2) **신발류 크리닝용 백악(白堊 : whitening) :** 결합제(예: 텍스트린이나 가죽 글루)로 타블렛 모양의 응집한 백악(白堊)으로 되어 있으며 디스템퍼(distemper)의 일종이다. 이들은 페이스트(paste)나 분산물(dispersion) 형태인 것도 있다.

(3) **가죽의 완성이공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 수성안료 :** 일반적으로 디스템퍼(distemper)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광물성 안료나 유기 안료와 특정량의 결합제[예: 카세인산염(caseinate)]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루 상태의 것·페이스트(paste) 상태의 것·물에 분산된 것이 있으며 가죽광택제를 혼합한 때도 있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벽·바닥 등에 사용하는 표면처리제로서 고비율의 충전제가 첨가된 고무나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보통 매스틱(mastic)과 같이 주걱·흙손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물품(**제3214호**)

(b) 페인트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으나 페인팅에 적합하지 않는 인쇄용 잉크(**제3215호**)

(c) 가루 페인트 : 주로 수지로 조성되며 첨가제·안료 등을 함유하며 열 효과에 의하여(정전기를 응용하는지에 상관없다) 목적물에 사용하는 것(**제39류**)

32.11 - 조제 드라이어

조제 드라이어(prepared drier)는 건성유의 산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정 페인트나 바니시(vernish)의 건조를 촉진시키는데 사용하는 혼합물이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화학건조제(붕산납·나프텐산아연·오레인산아연·이산화망간·수지산코발트 등)에 석고(고형건조제) 등의 충전제를 혼합한 것·이러한 물질을 검·우드·황산테레빈유·백정 등[예: 백정에 나프텐산칼슘·나프텐산코발트를 용해)에 농축 용해한 것[건성유(액체 상태 건조제나 페이스트(paste) 상태 건조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1518호**에 해당하는 보일유·그 밖의 화학적 변성유
- (b)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보통 **제28류**나 **제29류**)
- (c) 수지산염(**제3806호**)

32.12 -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 ·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 스탬프용 박(箔)

3212.90 - 기타

(A)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가루 · 금속플레이크(flakes)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액체 상태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 알루미늄 그 밖의 금속가루와 플레이크(flake) 등의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예: 건성유 · 백정(白精 : white spirit) · 검우드 · 황산테레빈유 · 바니시(vernish)]에 농축 분산시킨 것으로서, 액체 상태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페인트나 에나멜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바니시(vernish)나 래커(lacquer)(예: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합성 중합체의 용액에 농축 분산시킨 것[때때로 “펄 에센스(pearl essence)”라고 부른다]도 포함한다.

- (a) 천연 진주색 안료(구아닌과 히포크산틴을 함유하며 특정 어류의 비늘에서 얻는다)
- (b) 합성 진주색 안료(예: 산화염화 비스무트나 이산화 티타늄으로 도포한 운모)

이들은 모조진주 · 네일 에나멜 · 그 밖의 페인트와 에나멜의 제조에 사용한다.

(B) 스탬프용 박(箔 : foil)

이 물품[블로킹 포일(blocking foil)이라고도 한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얇은 시트(sheet)로 되어 있다.

- (1) 금속가루(귀금속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glue) · 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 (2)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예를 들어, 종이 · 플라스틱) 위에 증착 · 음극 스퍼터링 등의 방법으로 부착한 것

손이나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일반적으로 가열) 서적 표지나 모자띠 등의 인쇄에 사용한다.

압연(rolling)이나 해머링(hammering)으로 만든 금속박(箔 : foil)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예: 제7108호의 금박(箔)(gold foil) · 제7410호의 구리박(箔) · 제7607호의 알루미늄박(箔)].

(C)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이것은 보통 착색제와 다른 물질(예: 불활성 희석제·착색제의 침투와 고착을 촉진시키는 계면활성제)의 혼합물로 된 비피막 형성 제품이며 때로는 매염제(媒染劑 : mordant)를 첨가할 때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해당한다.

- (1) 소매용 포장의 것(예: 가루가 든 주머니·액체가 든 병)으로서 염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 (2) 명백히 소매용 모양으로 된 것[예: 구(ball)·정제(tablet) 등]

이 호에서 분류하는 염료는 주로 “가정용 염료(household dye)”(예: 의류용·신발용·가구용)로서 보통 거래된다. 이 호에는 또한 현미경용 조제품의 착색용 등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수 염료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화가용 물감·학생용 물감·간판도장공용 물감·색조 수정용 물감·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태블릿(tablet) 모양·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와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제3213호**)
- (b) 인쇄용 잉크(**제3215호**)
- (c) 연극용 그리스페인트(grease paint)와 그 밖의 분장(make-up)제(**제3304호**)
- (d) **제3305호**의 모발 “염색제(dye)”
- (e) 착색 크레용과 파스텔(pastel)(**제9609호**)

**32.13 - 화가용 · 학생용 · 간판도장공용 · 색조 수정용 · 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
[태블릿(tablet) 모양인 것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 세트인 것

3213.90 - 기타

이 호에는 화가용 · 학생용 · 간판도장공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 물감과 페인트 · 색조 수정용 물감 · 오락용(amusement) 물감과 그 밖의 물감(수채 물감 · 과슈(gouache) 칼라 · 유성 페인트 등)으로서 태블릿(tablet) 모양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 ·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세트나 아웃피트[브러시 · 팔레트(palettes) · 팔레트 나이프(palette knives) · 찰필(擦筆 : stumps) · 접시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로 판매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액체 상태 · 고체 상태의 인쇄용 잉크(색소)나 인디안 잉크 · 제3215호에 분류하는 물품 · 크레용 · 파스텔(pastel) · 이와 유사한 물품(제9609호)은 제외한다.

32.14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3214.90 - 기타

이 호의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도록 다양하게 만든 조제품이다.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 그러나 일부는 사용할 때 가열(예: 용해)하거나 액체(예: 물)를 첨가함으로써 페이스트(paste) 상태가 되도록 만든 고체나 가루 상태로 된 것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코킹건(caulking gun) · 주걱 · 흙손 · 반죽 판 · 이와 유사한 도구에 의해 사용하여진다.

(I)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 · 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감용 · 시일(seal)용 · 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glue)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 다만, 이 그룹의 물품에는 장루(stomas)와 누공(fistulas) 주위의 환자 피부에 사용하는 매스틱(mastic)도 포함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기름(油 : oil)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mastic)** : 이들 물품은 건성유 · 충전제(기름과 반응하는 것이나 불활성한 것을 포함한다)와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주성분으로 하며, 대표적인 것은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이다.
- (2) **왁스(루팅왁스)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왁스류에 간혹 접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지 · 셸락(shellac) · 고무 · 수지 에스테르(ester)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 왁스의 전부나 일부가 세틸알코올(cetyl alcohol)이나 스테아릴알코올(stearyl alcohol)과 같은 물질로 치환된 매스틱(mastic)도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으로 취급된다. 이 항의 매스틱은 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와 통 등의 도장용 봉합제를 포함한다.
- (3) **수지 매스틱(resin mastic)과 시멘트** : 이들 물품은 천연 수지[셸락(shellac) · 담마(damar) · 로진(rosin)]이나 플라스틱[알키드수지 · 폴리에스테르(polyester)수지 · 쿠마론-인덴수지 등]로 만들어지며, 이들을 상호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그 밖의 물질(예: 왁스 · 오일 · 역청물질 · 고무 · 벽돌분 · 석회 · 시멘트 · 그 밖의 광물성 충전제)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 이들 매스틱 중에는 아래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매스틱(예: 플라스틱 물질이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과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종류의 매스틱과 시멘트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자공업에 있어 충전제로서, 유리 · 금속 · 도자기용의 봉합제로서 사용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용융(鎔融 : fused)시켜 유체상태로 만든 후에 사용한다.

- (4) **물유리(water-glass)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두 개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두 개 성분 중 하나는 규산나트륨과 규산칼슘나트륨의 수용액이며 다른 하나는 충전제(예: 석영 가루·모래·석면섬유 등)이다. 이들은 주로 점화플러그·엔진블록·기름통·배기관·라디에이터(radiator) 등의 접합에 사용하며, 또한 어떤 접합 부분의 충전이나 마감용으로 사용한다.
- (5) **옥시염화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반응 억제제와 어떤 경우에는 충전제가 첨가된 산화아연과 염화아연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들은 목재·도자제품 등의 구멍과 틈을 메꾸는데 사용한다.
- (6) **옥시염화 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염화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에 충전제[예: 목재 가루(木粉 : wood flour)]를 첨가하여 제조된다. 이들은 주로 목제품의 틈을 메우거나 접합하는데 사용한다.
- (7) **황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황에 불활성(不活性 : inert) 충전제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이들은 고체형으로서, 경화·방수·내산성(耐酸性)이 요구되는 차단벽 속에 사용하며 조각으로 된 물품을 접합하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 (8) **석고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섬유 모양과 솜뭉치같은 가루로서 약 50%의 석고에 석면섬유·목질셀룰로오스(wood cellulose)·유리섬유·모래 등과 같은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조성된다. 이들은 물의 첨가로 페이스트(paste) 상태로 되어 나사·피스톤핀(gudgeon pin)·맞춤 못(dowel)·훅(hook) 등을 견고하게 하는데 사용한다.
- (9)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폴리우레탄·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이산화티타늄·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것은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한다. 일부 매스틱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 진득하게 남아 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acoustic sealant)]. 그 외 매스틱은 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고체화[핫-멜트 매스틱(hot-melt mastic)]·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되거나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
-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든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매스틱은 유리·금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과 차체(coachwork) 제조용 충전제·접합제·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할 때에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10) **산화아연과 글리세롤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내산성(耐酸性) 도료의 제조 사용하며, 철판을 도자품에 접합하는데 사용하며 관의 연결에도 사용한다.
- (11)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예를 들어, 티오플라스트(thioplast)에 충전제(흑연·규산염·탄산염 등)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유기용제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들은 유연한 보호도포층[화학약품과 용제(溶劑 : solvent)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이들 매스틱은 또한 색소·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충전제·결합제·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수성의 분산(aqueous dispersion)으로 조성되어 금속 캔을 밀봉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 (12) **피부에 사용하는 종류의 매스틱** : 이들은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과 같은 유기용제 속에, 예를 들어, 소듐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 펙틴(pectin) · 젤라틴(gelatin)과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이 용해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다. 이들은 예를 들어 환자의 장루(stomas)와 누공(fistulas) 주위의 환자 피부에서 피부와 폐기물 수집 백(waste collection bags) 사이에 누출방지 접착부를 형성하기 위한 실란트로서 사용된다. 이들은 치료특성이나 예방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 (13) **실링왁스(sealing wax)** : 이들 물품은 반드시 수지질의 물질[예: 셸락(shellac) · 로진(rosin)]과 광물성 충전제와 착색 물질을 일정 비율(보통 높은 비율)로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들은 구멍을 메꾸는데, 유리기구의 방수 실링(watertight sealing) · 문서 등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한다.

(II)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넓은 면적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매스틱(mastic) 등과 다르다. 이들은 충전제와 안료(존재하는 경우)의 함유량이 높다는 점에서 페인트 · 바니시(vernish)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구별되며 ; 이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봉합제와 용제(溶劑 : solvent)나 분산액의 함유량보다 높다.

(A) 도장용 충전제(painters' filling)

도장용 충전제는 거친 표면을 고르게 하고 필요하면 틈 · 구멍 · 다공성(多孔性) 표면을 충전함으로써 도장용 표면(예: 실내벽)을 균일하게 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이 굳어진 후 샌드페이퍼로 고르게 한 후에 페인트를 칠한다.

이 범위에는 기름 · 고무 · 글루(glue) 등을 기본 재료로 한 충전제를 포함한다.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충전제는 동종의 일부 매스틱과 성분이 유사하므로 역시 차체(coachwork) 디자인 공정 등에 사용한다.

(B) 비내화성 표면처리제(surfacing preparation)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는 방수와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외면 · 내실벽 · 마루 · 천장 · 수영풀장의 벽과 바닥 등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최종 표면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유지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같은 양의 석고와 모래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첨가하여 제조된 가루 상태의 조제품
- (2) 석영과 시멘트를 기본 재료로 하여 소량의 가소제(可塑劑)를 첨가한 가루 상태의 조제품으로 예를 들어, 물을 첨가한 후에 벽이나 바닥에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3) 광물성 도료 충전제(예: 분쇄한 대리석 · 석영이나 석영과 규산염의 혼합물)에 결합제(플라스틱 물질이나 수지) · 안료와 적당한 물 · 용제(溶劑 : solvent)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조제품
- (4) 예를 들어, 합성고무 · 아크릴중합체 · 안료를 혼합한 석면 섬유와 물로 된 액체 상태 조제품. 이들 물품은 페인트 브러시나 분무기로 건물 외면에 칠해지며, 페인트보다 두꺼운 층을 형성한다.

*
* *

위에서 설명한 물품 중 어떤 것은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구성성분의 상호 혼합이나 어떤 구성성분의 첨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물품은 해당 성분이 다음 각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 (i)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
- (ii) 동시에 제시되는 것 ; **그리고**
- (iii)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그러나 사용할 때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화제(硬化劑)가 결합되어 있다할지라도 그 조성이나 포장으로 보아 퍼티(putty) 조제품·매스틱(mastic) 조제품·충전제 조제품·표면처리제 조제품의 조제에 사용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특정 국가에서 “매스틱(mastic)”으로 알려진 천연 수지(**제1301호**)
- (b) **제2520호·제2522호·제2523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터(plaster)·석회와 시멘트
- (c) 아스팔트제의 매스틱과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제2715호**)
- (d)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제3006호**)
- (e) 브루어 피치(brewers' pitch)와 그 밖의 **제3807호**의 물품
- (f) 내화 시멘트와 내화 몰타르(mortar)(**제3816호**)
- (g) 주형이나 주물용 코어의 조제 접결제(**제3824호**)

32.15 -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용 잉크

3215.11 -- 흑색

3215.19 -- 기타

3215.90 - 기타

(A) **인쇄용 잉크(또는 인쇄용 칼라)** : 미세하게 분리된 흑색이나 유색 안료와 전색제(展色劑 : vehicle)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농도의 페이스트(paste)이다. 그 안료는 보통 흑색 잉크용의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며 유색잉크용의 유기나 무기물일 수도 있다. 그 전색제(展色劑)는 천연 수지나 합성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름에 분산되어 있거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주기 위한 소량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B) **일반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 : 흑색이나 그 밖의 착색물질을 물에 용해하거나 현탁(懸濁)한 것으로서 보통, 검(gum)이나 그 밖의 물품(예: 보존제)을 첨가한다. 이것들은 철염 · 로그우드(logwood)추출물(extract) · 유기 합성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잉크류이다. 인디안 잉크는 주로 제도용에 사용하며 보통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물[아라비아고무 · 셀락(shellac) 등을 첨가]이나 어떤 동물성아교(animal glue)에 현탁(懸濁)한 것이다.

(C) **그 밖의 잉크로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

- (1) 복사용 잉크와 젤라틴판 잉크(보통 잉크를 글리세롤 · 설탕 등으로 진하게 한 것)
- (2) 볼펜용 잉크
- (3) 복사기용 잉크와 잉크패드 주입용 잉크나 타이프라이터 리본용 잉크
- (4) 마크용 잉크(예: 질산은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5) 금속 잉크(미세하게 분쇄된 금속이나 합금을 검(gum) 용액에 현탁한 것으로서 금 잉크 · 은 잉크 · 청동 잉크가 있다)
- (6) 조제 은현(隱現 : sympathetic)잉크나 불가시(不可視) 잉크(예: 염화코발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이지만 단순한 회석이나 분산을 한 후 잉크로서 사용하도록 농축하거나 고형화[즉 가루 상태 · 정제(tablet) · 막대(stick) 모양의 것]한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토너(toner)[카본 블랙(carbon black)과 열가소성 수지의 혼합]와 캐리어(carrier)(에틸 셀룰로오스로 코팅한 입자)로 구성된 현상제로서 복사기에 사용하는 것(**제3707호**)
 - (b) 볼펜의 교환대치심으로 볼포인트(ball point)와 잉크통을 갖추고 있는 것(**제9608호**). 한편 단순히 잉크만 충전되어 있는 보통 만년필용의 카트리지(cartridge)는 이 호에 분류한다.
 - (c) 잉크패드(ink-pad)나 잉크를 칠한 타자기용의 리본(**제9612호**)
-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천연 올레오레진(oleoresin)이나 제1301호·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
 - 나. 비누나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
 - 다.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나 제3805호의 그 밖의 물품
2.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
3.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냥,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총설

제3301호의 **정유(essential oil)와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은 모두 식물재료로부터 추출되며, 추출 방법의 채택에 따라 얻어진 물품의 형태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수증기증류나 유기용제 추출공정이 채용되느냐에 따라 특정 식물(예: 시나몬)이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하기도 하고 올레오레진(oleoresin)을 추출하기도 한다.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예외],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물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그러나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보조적인 성질 이상으로 소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3307호에 분류한다.

위의 용도에 더하여 타 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예: 바니시(vernish)]과 **혼합되지 않은 물품**[예: 방향 처리되지 않은 활석 가루, 표포토(산성백토), 아세톤, 명반(alum)]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a)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종류의 포장이 되어 있으며 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실내용 탈취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레이블(label)·인쇄물·그 밖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
- (b)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용도에 쓰이도록 특정화된 모양으로 한 것(예: 작은 병 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vernish)로서 그 바니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브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피부 보호용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 이외의 석유 젤리(petroleum jelly)(**제2712호**)
- (b) 의약품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제3004호**)
- (c)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 할 때 신체의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커플링제로서 사람이거나 수의약에 사용하는 겔(gel) 제품(**제3006호**)
- (d) 비누 그리고 세제 또는 비누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제3401호**)

33.01 -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앵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 -- 오렌지유

3301.13 -- 레몬유

3301.19 -- 기타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24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3301.25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3301.29 -- 기타

3301.30 - 레지노이드(resinoid)

3301.90 - 기타

(A)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앵설루트(absolute)의 것을 포함한다]와 레지노이드(resinoid)·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는 향료·식품과 그 밖의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며 그 원천이 식물이다. 보통 복합성분이며 알코올·알데히드·케톤(ketone)·페놀(phenol)·에스테르(ester)·에테르(ether)와 테르펜(terpene)을 여러 가지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유는 테르펜의 제거로 방향성(芳香性)이 변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대부분의 정유는 휘발성이며, 종이 위에 정유가 묻으면 곧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유(essential oil)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공정으로 얻는다.

- (1) 착유법(예: 레몬 껍질에서 레몬유를 얻는다)
- (2) 수증기증류법
- (3) 유기용제[예: 석유에테르·벤젠·아세톤·톨루엔(toluene)]나 초임계유체(super-critical fluids)(예를 들어, 가압 이산화탄소 가스 등)에 의해서 신선한 식물성 원료로부터 추출한 것
- (4) 냉침법(冷浸法 : *enfleurage*)이나 온침법(溫浸法 : *maceration*)에 의해 얻어진 농축물로부터 추출한 것(아래 (B) 참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3)항의 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콘크리트(concrete)**도 포함한다.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식물성 왁스의 존재로 인하여 고체 상태나 반(半)고체 상태이며 이들 왁스를 제거함으로써 **엡설루트(absolute)**를 얻게 되며 ; 이 호에 분류한다.

레지노이드(resinoid)는 향수·화장품·비누·계면활성제 공업에서 주로 고착제(fixative)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기본적으로 비휘발성의 물질로 구성되며 다음의 삼출물에서 유기용제나 초임계액체(super-critical fluid) 추출에 의해 얻어진다.

(i) 건조된 천연 년셀룰러(non-cellular) 식물성 수지질 재료[예: 천연 올레오레진(oleoresin)이나 올레오검레진(oleo-gum resin)] ;

(ii) 건조된 천연 동물성 수지질 재료예: 해리향, 영묘향 또는 사향)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 상거래 관습상 “조제된 올레오레진(prepared oleoresin)”이나 “스파이스 올레오레진(spice oleoresin)”으로 알려져 있는 추출한 것으로서 유기용제 추출이나 초임계액체 추출에 의해 천연의 다포성(多泡性) 식물원재료[보통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 식물]로부터 얻는다. 이들 추출물에는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식물의 향기·맛의 특성을 나타내는 휘발성의 향기소[예: 정유(essential oil)]와 비휘발성의 향미소(예: 수지·지방유·매운 성분)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중 정유의 함유량은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 식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이들 물질은 주로 식품공업에 향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천연 올레오레진(oleoresin)(**제1301호**)

(b) 휘발성의 성분과 일반적으로 [방향성(芳香性) 물질은 별도로 하고] 상당히 높은 비율의 그 밖의 식물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추출물(그 밖의 다른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1302호**)

(c) 동물성·식물성의 착색제(**제3203호**)

정유·레지노이드와 추출된 올레오레진은 간혹, 추출할 때 사용한 소량의 용제(溶劑: solvent)(예: 에틸알코올)를 함유하고 있으나, 이것 때문에 이 호의 범위에서 이들을 제외하지 않는다.

주요 성분을 일부 제거하거나 추가로 단순히 표준화한 정유·레지노이드와 추출된 올레오레진으로서 표준화한 제품의 조성이 천연 상태에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범위 이내로 남아있다면 이 호에 분류하나 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을 분류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변성(테르펜계 탄화수소를 제거한 것은 제외한다)하여 최종 물질의 조성이 본래 물질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302호**). 이 호에는 더욱이 희석제(diluent)나 증량제(carrier)[예: 식물유·덱스트로스(dextrose)·전분]를 첨가한 물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302호**).

주요한 정유·레지노이드와 추출한 올레오레진의 목록이 해설서 부속서에 기재하고 있다.

(B) 지방·불휘발성유·왁스·그 밖의 유사한 물품을 매질(媒質: media)로 한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이 호의 농축물은 정유를 냉각하거나 가열처리[냉침법(冷浸法: *enfleurage*)·온침법(溫侵法: *maceration*)·소화법(消化法: *digestion*)]하여 지방·불휘발성유·석유젤리·파라핀 왁스(*paraffin wax*) 등을 매질(媒質)로 식물이나 꽃에서 추출할 때 얻어진다. 따라서 정유의 농축물은 지방·불휘발성유 등에서 농축물 형태로 되어 있고 지방에 용해된 농축액은 상거래 관습상으로 “플라워 포마드(*flower pomade*)”로 알려져 있다. “포마드(*pomade*)”로 알려진 모발용 조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305호)**.

(C) 테르펜계 부산물

이 호에는 분별증류하거나 그 밖의 공정으로 정유에서 분리된 테르펜계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부산물은 특정 화장 비누의 향료나 특정 식품의 향미료로 흔히 사용한다.

(D)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는 식물을 수증기 증류로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할 때 증류 결과물의 수용성 부분에서 얻는다. 증류물에서 정유를 분리한 후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에는 소량의 정유가 남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성(芳香性)을 가지고 있다. 특정 증류액은 알코올 속에 보존하고 있는 식물성 물품을 증류하여 얻은 어떤 증류액은 소량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예: 위치 헤이즐 증류액(*witch hazel distillate*)].

이 호에는 정유의 수용액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상호 혼합하거나, 보통 향료나 의약품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가장 일반적인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오렌지꽃·장미·멜리사(*melissa*)·박하·회향·체리로렐(*cherry-laurel*)·라임블로섬(*lime-blossom*)·위치 헤이즐(*witch hazel*) 등이다.

위에서 규정한 **제외** 사항에 더해서, 다음의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바닐라올레오레진(*vanillaoleoresin*)[때때로, 바닐라레지노이드(*vanilla resinoid*)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로 잘못 알려진 것](**제1302호**)
- (b) 정유(*essential oil*)(예: 분리테르펜)나 레지노이드(*resinoid*)에서 분리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자연분리·합성으로 조제된 것)(**제29류**)
- (c) 정유의 혼합물·레지노이드의 혼합물·추출한 올레오레진의 혼합물·정유와 레지노이드나 추출한 올레오레진과의 혼합물·이들 물질들의 복합물(화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다)과 정유·레지노이드나 추출한 올레오레진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제3302호** 해설 참조)
- (d) 검터펜틴(*gum turpentine*)·우드터펜틴(*wood turpentine*)·황산터펜틴과 그 밖의 테르펜계 오일(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제3805호**)



[소호해설]

소호 제3301.12호

소호 제3301.12호의 “오렌지(orange)”에는 만다린(mandarin)[탄저린(tangerine)과 세트수머(satsuma : 귤)를 포함한다]·클레멘타인(clementine)·윌킹(wilking)·이와 유사한 시트러스(citrus) 교잡종을 제외한다.

33.02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3302.90 - 기타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식품·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 (1) 정유(essential oil)의 혼합물
- (2) 레지노이드(resinoid)의 혼합물
- (3)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수지의 혼합물
- (4) 합성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
- (5) 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
-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증량제(carrier)[예: 식물유·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
- (7) 다른 류 물품(예: 스파이스)과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합성 향료]과의 혼합물(희석제나 캐리어와 결합하거나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물질이 해당 혼합물의 기본 재료로 된 물품으로 **한정한다**.

정유, 레지노이드나 추출한 올레오레진 조성 중 한 개나 그 이상의 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최종 물품으로서 그 조성이 본래 물품과 현저히 다를 때는 이 호의 혼합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의 예로는 멘톤오일(menthone oil)(멘톨의 대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박하유(薄荷油 : peppermint oil)를 빙냉하여 봉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특히 멘톤 63%와 멘톨 16%를 함유한다), 백장뇌유[장뇌와 사프롤(safrole)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뇌유를 빙냉·증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디펜텐(dipentene)·피넨(pinene)·캠펜(camphene) 등을 합하여 시네올(cineole)을 30%~40% 함유한다]와 게라니올(geraniol)[시트로넬라유를 분별 증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시트로넬롤(citronellol) 등 여러 가지와 함께 게라니올(geraniol)을 50%~77% 함유한다]

특히, 정유(essential oil)와 보향제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을 첨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향료 기본 재료**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알코올[예: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용액으로서 하나 이상의 향료 물질을 용해한 것은 향료·식품·음료나 그 밖의 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알코올을 함유한 것이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성 음료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조제품은 이 류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 방향성(芳香性) 물질은 일차적으로 음료에 향기를 부여하는데 사용하며 부차적으로 맛을 내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음료의 특색을 이루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주스·색소·산미료(acidulant)·감미료 등도 함유할 수 있다. 제시된 상태로는 음료로 소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22류의 음료와 구별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2호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제외**한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알코올성 조제품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의 화합물은 **제외**한다(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 **제2106호**에 해당).

33.03 - 향수와 화장수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고체 상태[막대(sticks) 상태를 포함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한다.

향수(perfume and scent) : 보통 정유(essential oil)·플로랄 콘크리트(floral concrete)·애플절루트(absolute)·인조방향성(芳香性)물질 혼합물을 고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으로서, 보통 경미한 향기가 있는 보조제·보향제·안정제와 혼합되어 있다.

화장수(toilet waters) : 예를 들어 라벤다수(lavender water)·오데콜론(eau de Cologne) 등과 같은 것으로서[제3301호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과 혼동하지 말 것], 앞에서 설명한 향료류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정유 등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토일렛 비니거(vinegar)(제3304호)
- (b) 면도 후에 쓰는 로션과 인체용 탈취제(제3307호)

33.04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 - 입술화장용 제품류

3304.20 - 눈화장용 제품류

3304.3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 기타

3304.91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4.99 -- 기타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조품

(2) 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톨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주름 제거와 피내(皮内)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 ;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토일렛 비니거(vinegar)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

(B) 매니큐어(manicure)용제품류나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manicure)용이나 페디큐어(pedicure)용의 광택제·바니시(varnish)·바니시 제거제·각피 제거제와 그 밖의 제품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약조제품(예: 습진 치료용 크림)(**제3003호**·**제3004호**)
- (b) 발냄새 방지제와 동물의 손톱이나 발톱 처치용 조제품(**제3307호**)
- (c) 인조손톱(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33.05 - 두발용 제품류

3305.10 - 샴푸

3305.2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3305.30 - 헤어 래커(hair lacquer)

330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 (1) **샴푸** :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 (2) **퍼머넌트 웨이빙용(permanent waving)이나 스트레이트닝용(straightening) 제품류**
- (3) **헤어 래커(hair lacquer)**[종종 “헤어 스프레이(hair spray)”라고도 한다]
-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크림 [“포마드(pomade)”]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 두피 이외의 체모(體毛)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7호)**.

**33.06 -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 치약

3306.2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3306.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강·치과위생용 제품류를 분류한다.

(I) **세척제** : 모든 타입의 것

(1) 치약과 그 밖의 치아용 조제품. 이들은 칫솔과 같이 사용하는 물질이나 조제품으로, 접근 가능한 치아 표면을 세정 또는 연마에 사용되거나, 충치 예방 처치와 같은 다른 목적에도 사용된다.

치약과 그 밖의 치아용 조제품은 연마제를 함유하고 있거나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2) 의치 세척제 : 의치의 세척이나 광택용 조제품(연마제 성분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II) 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

(III) 의치교정용 페이스트(paste)·가루·정제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치간 청결용 실(yarn)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도 분류한다.

33.07 -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항료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 면도용 제품류

3307.2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307.3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3307.49 -- 기타

3307.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 면도용 제품류(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

예: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 “면도 후에 사용하는(after-shave)” 로션 · 알루미늄블록(alum block)과 지혈막대(styptic pencil)

블록(blocks) 모양의 면도용 비누는 **제외한다(제3401호)**.

(II) 인체용 탈취제[personal(body)deodorant]와 땀 억제제(antiperspirant)

(III) 목욕용 조제품. 예: 방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용 제품류(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

(IV) 실내용의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1) 실내용 향 첨가제와 종교의식용 방향제 : 이들은 보통 증발하거나 연소[예: “아가바티(Agarbatti)”]에 의해서 사용하며, 액체 상태 · 가루 상태 · 원추형 주머니 · 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 중의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향기나는 (양)초(perfumed candle)는 **제외한다(제3406호)**.

(2)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소독력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라우릴 메타아크릴레이트(lauryl methacrylate)와 같은 물질[예를 들면,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결합제]로 냄새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용 경우에는 보통 에어로졸 캔(aerosol can)에 포장되어 있다.

냉장고·자동차 등에 쓰이는 탈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activated carbon)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V)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제모제(depilatory)**

(2) **향낭(scented sachet)** : 린넨 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

(3) **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4) **콘택트렌즈나 의안용 액**. 이들은 세척용·소독용·담금용(soaking)·착용 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부 록

제3301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와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목록

정유(essential oil)

Angelica	안젤리카	Gardenia	치자(梔子)	Oak Moss	오크 모스
Anise seed	아니스 씨	Garlic	마늘	Onion	양파
Badian	대회향(大茴香)	Geranium	제라늄	Origanum	오리가눔
Basil	바질	Ginger	생강	Orris	흰붓꽃
Bay	월계수	Grapefruit	그레이프프루트	Palmarosa	팔마로사
Benzoin	벤조인	Guaiacwood	구아이아나무	Parsley	파슬리
Bergamot	베르가모트	Ho (Shiu)	호(Ho) (Shiu)	Patchouli	파츨리
Birch	자작나무	Hop	홉	Pennyroyal	페니로얄
Bitter almond	쓴(비터) 아몬드	Hyacinth	히아신스	Pepper, black	후추
Bitter orange	쓴(비터) 오렌지	Hyssop	히습	Peppermint	페퍼민트
Bois de rose	자단(紫檀 : 로즈우드)	Jasmine	자스민	Petitgrain	페티그레인
Broom	금작화(金雀花)	Jonquil	노랑 수선화	Pimento	피망
				(Allspice)	(올스파이스)
Cajuput	카유폿	Juniper	주니퍼	Pine needle (but not pinewood heading 38.05)	솔잎(단, 소나무는 제외 - 제3805호)
				Rose	장미
Calamus	창포(菖蒲)	Kuromoji	구로모지(黑文字)	Rosemary	로즈마리
Camphor	녹나무	Laurel	월계수	Rue	루
Cananga	카난가(일랑일랑屬)	Lavandin	라반딘	Sage	세이지
Canella	카넬라	Lavender	라벤더	Sandalwood	단향목(檀香木)
Caraway	캐러웨이	Lemon	레몬	Sassafras	찰(檫)나무
Cassia	육계(肉桂)	Lemongrass	레몬그라스	Savin	사빈
Cassie	카씨에	Lime (Limette)	라임 (라이메트)	Spearmint	스피어민트
Cedar	삼나무	Linaloe	린알로에	Spike lavender	스파이크 라벤더
Cedrat	세드라(시트런)	Mace	메이스	Sweet orange	단(스위트) 오렌지
Celery	셀러리	Mandarin (Tangerine)	만다린 (탄제린)		
		Marjoram	마조람	Tansy	탠지
Chamomile	캐모마일	Mawah (Kenya geranium)	마와 (케냐 제라늄)	Tarragon	타라곤
Chenopodium (Wormseed)	토형개(土荊芥)	Melissa	멜리사(레몬 밤)	Thuja	눈측백(一側柏; 투야)
Cinnamon	계피	Mimosa	미모사	Thyme	타임
Citronella	시트로넬라	Mint	민트	Tolu	톨루
Clove	정향(丁香)	Mustard	겨자	Valerian	설령취오줌풀(발레리안)
Copaiba	코페이버			Verbena	마편초(馬鞭草; 말초리풀)
		Myrrh	몰약(沒藥)	Vetiver	베티버
Coriander	코리앤더	Myrtle	화석류(花石榴; 도금양(桃金娘)) 나무	Violet	바이올렛
Cumin	커민	Narcissus	수선화	Wintergreen	노루발풀
Cypress	편백(扁柏)	Neroli (Orange flower)	네롤리 (오렌지 꽃)		
Dill	딜	Naiouli	니아울리	Wormwood	쓴쭈
		Nutmeg	육두구(肉荳蔻)	Ylang-ylang	일랑일랑
Eucalyptus	유칼립투스				
Fennel	회향(茴香)				
Galangal	갈랑갈				

레지노이드(resinoid)

Asafoetida	아위(阿魏 ; 아사포에티다)	Galbanum	풍자향(楓子香 ; 갈바눔)	Myrrh	몰약(沒藥)
Benzoin	벤조인	Labdanum	라브다넘	Olibanum	유향(乳香)
Castoreum	해리향(海狸香)	Mastic	매스틱	Opopanax	오포파낙스
Civet	시뵈트	Mecca balsam (Balm of Gilhead)	메카 발삼(길르어드향유)	Peru balsam	페루 발삼
Copaiba	코페이버	Musk	사향(麝香)	Styrax	매죽나무
Elemi	엘레미			Tolu	톨루

추출한 올레오레진(extracted oleorisin)

Anise seed	아니스 씨	Cubeb	쿠베브	Mustard	겨자
Badian	대회향(大茴香)	Cumin	커민	Nutmeg	육두구(肉荳蔻)
Basil	바질	Deertongue	디어 텅(북미 동부산 쓴풀의 일종)	Oregano	오레가노(꽃박하)
Bay	월계수	Dill	딜	Origanum	오리가눔
Canella	카넬라	Fennel	회향(茴香)	Paprika	파프리카
Capsicum	캡시컴	Foenugreek	호로파(葫蘆巴)	Paradise seed	파라다이스 씨
Caraway	캐러웨이	Galangal	갈랑갈	Pepper, black	후추
Cardamon	소두구(小荳蔻)	Ginger	생강	Pimento (Allspice)	피망 (올스파이스)
Carrot	당근	Hop	홉	Rosemary	로즈마리
Cassia	육계(肉桂)	Horseradish	겨자무	Sage	세이지
Celery	셀러리	Juniper	주니퍼	Savory	세이보리
Cinnamon	계피	Laurel	월계수	Tarragon	타라곤
Clove	정향(丁香)	Lovage	러비지(야생 셀러리)	Thyme	타임
Copaiba	코페이버	Mace	메이스	Turmeric	심황(沈黃 ; 울금 (鬱金))
Coriander	코리앤더	Marjoram	마조람		

제 3 4 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 · 조제 윤활제 · 인조 왁스 · 조제 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 다.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 · 치약 · 면도용 크림과 폼(foam) · 목욕용 조제품(제3305호 · 제3306호 · 제3307호)
2. 제3401호에서 “비누”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에는 소독제 · 연마가루 · 충전제 · 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가루를 함유한 물품은 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제3401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4. 제3403호에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란 제27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 · 수지 · 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가. 제1516호 · 제3402호 · 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 · 식물성 왁스(정제한 것인지 또는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다. 광물성 왁스나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 ·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나 제3809호 등)

총설

이 류에는 주로 지방(脂)·기름(油)이나 왁스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예: 비누·특정 조제 윤활제·조제 왁스·특정광택제·세척제·양초)이 포함되며, 특정의 인조제품(예: 계면활성제·계면활성조제품과 인조 왁스)도 포함한다.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과 혼합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천연산물은 **제외한다**.

34.01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11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3401.19 -- 기타

3401.20 -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401.3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I) 비누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이나 이들의 혼합물로 만들어지는 무기·유기의 알칼리 염(alkaline salt)이다. 실제로는 지방산의 일부가 로진산(rosin acid)으로 대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한다.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알칼리 반응을 하며 그 수용액은 기포성이 크다.

비누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크게 구별된다.

경(硬)비누(hard soap) : 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으로 만들어지며, 보통의 비누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백색·유색·열룩덜룩한 것도 있다.

연(軟)비누(soft soap) : 연비누는 수산화칼륨이나 탄산칼륨으로 제조된다. 이 물품은 점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녹색·갈색·담황색이며,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기도 한다.

액체 비누(liquid soap) : 비누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서 경우에 따라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이나 글리세롤(glycerol)이 첨가된다. 그러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화장용 비누** : 흔히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동성(floating) 비누와 방취 비누는 물론 글리세린 비누·면도용 비누·약용 비누·소독용 비누·연마비누도 포함한다.

(a) **부동성 비누(floating soap)와 방취 비누(deodorant soap)**

(b) **글리세린비누(glycerin soap)** : 반투명한 비누로서, 백색비누를 알코올·글리세롤(glycerol)·설탕으로 처리하여 만든다.

- (c) **면도용 비누**(면도용 크림은 제3307호에 분류한다)
 - (d) **약용 비누** : 붕산·살리실산·황·술폰아미드·그 밖의 의약품질을 함유하고 있다.
 - (e) **소독용 비누** : 소량의 페놀(phenol)·크레졸(cresol)·나프톨(naphthol)·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그 밖의 살균성 물질·세균발육 저지성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 종류의 비누는 같은 성분을 함유하는 **제3808호**의 소독제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양자는 각성분간(비누·페놀·크레졸 등)의 양적 비율이 다르다. 제3808호의 소독제는 상당한 비율의 페놀·크레졸 등을 함유하며, 액체 상태이지만 소독용 비누는 보통 고체이다.
 - (f) **연마 비누(abrasive soap)** : 비누에 모래·실리카(silica)·부석가루·슬레이트(slate)가루·톱밥·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첨가한 것이다. 이 호에는 연마 비누 중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주형 모양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연마제가 함유된 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는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405호**에 분류한다.
- (2) **가정용 비누** :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연마성이나 소독성을 가지고 있다.
- (3) **로진(rosin) 비누·톨유(tall oil)비누나 나프테네이트(naphthenate) 비누** : 이들은 지방산의 알칼리염 뿐만 아니라, 제3806호의 알칼리성 수지산염이나 제3402호의 알칼리성 나프텐산염을 함유하고 있다.
- (4) **공업용 비누** : 예를 들어 와이어 드로잉(wire-drawing)·합성고무의 중합·세탁업 등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

위에서 설명한 (1) (f)의 제외규정에 **따라서** 이 호의 비누는 보통 다음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molded pieces or shape)·플레이크(flake) 상태·가루 모양·페이스트(paste) 상태·수용액

(II) 비누로 사용하는 유기계면활성제와 조제품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moulded) 모양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화장용이나 세정용 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것(비누를 어떠한 비율로 배합하여도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단, 이들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 즉, 같은 용도에 쓰이는 비누의 보통 모양으로 **한정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모양으로 한 것에 **한정하여** 앞에서 설명한 물품에 모래·실리카(silica)·부석(pumice)가루 등을 첨가하여 연마성이 있게 만든 물품과 조제품을 포함한다.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소매 포장되지 않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

(Ⅳ)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

이 부분에는 향을 첨가하거나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보통 손이나 얼굴 세척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위에서 언급한 예외는 물론,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소프스톡(soap-stock) (제1522호)
- (b) 칼슘비누 그 밖의 금속비누와 같이 화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누(soap)”에 속함에도 불문하고 물에 녹지 않는 제품과 조제품(경우에 따라 제29류·제30류·제38류 등)
- (c) 단순히 향을 첨가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제33류)
- (d) 샴푸와 치약(각각 제3305호와 제3306호)
- (e)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조제계면활성제와 조제 세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비누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
- (f) 셀룰러플라스틱(cellular plastic)·셀룰러고무·방직용 섬유재료(워딩·펠트·부직포는 제외한다)·금속 패드 등으로서 비누·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이들은 보통 지지물에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34.02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31 -- 선형 알킬벤젠 술포산과 그 염

3402.39 -- 기타

-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41 -- 양이온성

3402.42 -- 비이온성

3402.49 -- 기타

3402.50 - 소매용 조제품

3402.90 - 기타

(I)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 · 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션(emulsion)은 섭씨 20°C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의 입자가 보이는 것 · (2)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되는 것 · (3) 투명과 반(半)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된 특성을 갖는 에멀션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기계면활성제는 계면에 잘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 ;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예: 표면장력의 저하 · 기포성 · 유화성 · 습윤성 등의 표면 활성)을 나타냄으로써 보통 “계면활성제(surfactant)”라고도 한다.

그러나 섭씨 20°C에서 농도 0.5%에 증류수의 표면 장력을 4.5×10^{-2} N/m(45dyne/cm)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

유기계면활성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음이온(anionic) 활성제** :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 · 식물유(트리글리세라이드) · 수지산의 황산화물과 술포화물 ; 지방알코올에서 유도한 황산화물과 술포화물 ; 석유의 술포화물,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의 것(어느 정도 비율의 광물유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암모늄이나 에탄올 아민(ethanolamine)의 것 ; 알킬폴리 에테르 황산화물 ; 알킬술포화물 · 알킬페닐에테르술포화물(alkylphenylethersulphonate) ; 알킬 황산화물 · 알킬아릴술포화물(예: 공업적 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포화물)

이 종류의 계면활성제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로서 소량의 지방성 알코올·알킬화물·그 밖의 소수성(疏水性) 원료물질을 함유하기도 하는데 이들 불순물은 황산화나 술폰화 반응을 거치지 않고 남은 물질이다. 이들 물질에는 또한 소량의 황산나트륨이나 그 밖의 잔류무기염(무수염으로 계산한 비율이 보통 15% 이하인 것)을 함유할 수 있다.

- (2) **양이온(cationic)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전리하여 양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아민 염과 제4암모늄염기의 염
- (3) **비이온(non-ionic)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이들의 물에 용해되는 성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와 지방성 알코올·지방산 또는 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
- (4) **양성(ampholytic) 활성제** : 용매의 조건에 따라, 수용액 중에서 전리하여 음이온 활성제나 양이온 활성제의 성질을 나타내는 계면활성제이다.

이 이온의 작용은 광의의 양성 화합물(amphoteric compound)의 작용과 유사하다. 예: 알킬베타인(alkylbetaine)·술포베타인(sulphobetaine)을 함유하는 단백질·그 분해물·아미노카르복시산계 아미노-술폰산계·아미노황산계과 아미노인산계의 치환화합물

(II) 조제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이 그룹의 물품은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A) 조제계면활성제(surface-active preparation)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앞에서 설명한 (I)의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
- (2) 앞에서 설명한 (I)의 계면활성제를 유기 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예: 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이나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tetrahydronaphthalene)에 용해한 것]
- (3) 앞에서 설명한 (I)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포네이트(alkylbenzenesulphonate)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
- (4) 비누를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과 같은 유기 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예: 비누의 수용액에는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이나 글리세롤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물품은 **제3401호**에 해당하는 액체 상태 비누이다]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분산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i) 섬유공업용의 세정제로서 섬유에 부착된 지방과 오물을 제조 공정과 완성 공정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

- (ii) 섬유공업용의 습윤제 · 유화제 · 축융 보조제(fulling assistants)와 증백제
- (iii) 가죽과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원피용 침지제(沈漬劑 : soaking agent) · 탈그리스(de-greasing)제 · 염색용 습윤제 · 균염제나 조색제
- (iv) 아래 (B)에 열거한 조제 세제 제조용의 기초원료[예: 음이온계 조제계면활성제로서 잔재물이나 일부러 첨가한 물질인 상당량의 황산나트륨 · 그 밖의 무기염(유기계면활성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v) 제지나 합성고무 공업에서의 분산제
- (vi) 광업용의 부유선광조제(flotation aid)
- (vii) 의약품과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

이 그룹은 활성(active)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비누의 포함비율에는 상관없다) 피부세정제의 유기계면 활성제들과 조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소매포장용으로 된 액체 상태나 크림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제3401호).

(B)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 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 · 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구성 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앞의 (A)의 물품과 구별된다.

필수 구성성분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 · 비누와 이들의 혼합물이다.

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빌더(builder)(세정력 증강제). 예: 폴리인산나트륨 · 탄산나트륨 · 규산나트륨 · 붕산나트륨 · 니트릴로삼초산의 염(NTA)
- (2) 부스터(booster)(기포제). 예: 알카놀아미드 · 지방산아미드 · 지방아민 옥사이드
- (3) 필러(filler)(증량제). 예: 황산나트륨 · 염화나트륨
- (4) 보조물(예: 표백제 · 형광백색염료 · 침전방지제 · 부식방지제 · 정전방지제 · 착색료 · 향료 · 살균제 · 효소)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조제 세제 :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detergent)**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 · 접시류 · 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 · 가루 상태 ·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이나 성형품으로 된 화장용(toilet)과 세제용(washing) 물품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

조제 보조 세제는 의류·가정용 리넨 등의 담그기(초벌세탁 : pre-washing)·헹구기나 표백에 사용한다.

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

(C) **청소나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 이들에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특히 위생용품·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든 산(acid)이나 알칼리(alkaline) 세척제 (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ii) 예를 들면, 낙농업이나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하는 탈지제·청소용제로서 다음과 같은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이나,
- 용제(溶劑 : solvent)와 유화제

이 그룹의 물품은 소량의 비누나 그 밖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샴푸나 거품 목욕용 조제품(비누나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3류**)

(b)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제3401호**)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

(d)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연마성 조제품[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제3405호**)

(e)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석유술포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

34.03 -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3403.11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3403.19 -- 기타

- 기타

3403.91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3403.99 -- 기타

석유(petroleum oil)나 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A) **마찰감소용 조제 윤활제** : 기계·차량·항공기와 그 밖의 기구·장치·도구 등의 동작 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의 오일의 혼합물·지방이나 그리스로 구성되거나 기본 재료로 되어 있으며, 종종 첨가제[예: 흑연·이황화몰리브덴·활석·카본 블랙(carbon blacks)·칼슘비누·그 밖의 금속비누·피치(pitch)·녹이나 산화 등의 억제제]를 함유한다. ~ 이 합성 윤활제는 실리콘을 기본 재료로 한 “그리스(greases)”나 제트 윤활유[또는 합성에스테르(synthetic ester) 윤활제]를 함유하고 특별하게 가혹한 조건에서 작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예: 내화 윤활제·정밀기기의 베어링용 윤활제·제트 엔진의 윤활제)

(B) **와이어 제조용 조제 윤활제** : 신선(wire-drawing)할 때 선재(wire rod)가 쉽게 다이스를 통과하도록 하는데 사용한다. 여기에는 텔로우(tallow)·황산의 수성유제 ; 나트륨비누·스테아린산알루미늄·광유(mineral oil)와 물의 혼합물 ; 기름·지방과 술폰-올레산염의 혼합물 ; 칼슘비누와 석회의 가루 모양 혼합물이 있다.

(C) **조제 절삭유(cutting-oil preparation)** : 보통 동물성·식물성·광물성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하며 간혹 계면활성제가 첨가된다.

절삭유 제조용 조제품(예: 석유계 술폰네이트나 그 밖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보통 절삭유 그대로 직접 사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402호).**

(D) **볼트나 너트의 조제 방출제** : 이들은 볼트나 너트·다른 부분을 느슨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윤활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또한 고형 윤활제나 솔벤트(solvent)·계면활성제·녹제거제 등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E)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나 부식방지제(anti-corrosion preparation)** : 윤활제를 주성분으로 만든 것

(F) **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 : 플라스틱·고무·건축·주물 등 여러 가지 공업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광유(mineral oil)·동식물성 기름·그 밖의 지방성 물질(술폰화·산화·수소화된 것을 포함한다)에 왁스·레시틴·산화방지제를 혼합하거나 유화시킨 것
- (2) 실리콘그리스(silicone grease)나 실리콘오일(silicone oil)을 포함하는 혼합물
- (3) 가루 흑연·활석·운모·벤토나이트(bentonite)·알루미늄에 기름·지방성 물질·왁스 등을 혼합한 물품

그러나,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동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이나 식용 조제품[예: 제빵용 디몰딩유(demoulding oil)]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17호)**.

(G) **방직용 섬유·가죽·모피 등의 윤활·급유·가치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 이 조제품은 방직 중 방직용 섬유를 윤활하거나 유연하게 하고 가죽 등을 “스터프(stuff)”(가죽에 첨가하는 가지 작업)하는데 사용한다. 여기에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유(mineral oil)나 지방성 물질과 계면활성제(예: 술폰리신올레이트)의 혼합물 ; 고유의 계면활성제가 광유와 그 밖의 화학품과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방직용 조제 윤활제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광유에 안정화한 폴리브덴 디설파이드(molybdenum disulphide)의 현탁액** : 이들은 폴리브덴 디설파이드를 기본적인 성분으로 하고, 광유를 전 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이들의 특수한 윤활성 때문에 엔진 등에 쓰이는 윤활유에 소량이 첨가된다.
- (2)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 이는 라놀린(lanolin)을 기본 재료로 하여 백정(white spirit)에 용해시킨 것이며, 백정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 (3) **비경화 페이스트(non-hardening paste)** : 이들은 석유젤리와 칼슘 비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공 파워 브레이크 장치를 조립할 때 조인트와 나사에 대한 윤활 및 밀폐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인조 데그라스(degras)(**제1522호**)
- (b)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커플링제로서 의약이나 수의약에 사용하는 겔(gel) 조제품(**제3006호**)
- (c) 콜로이드(colloid) 모양·반(半)콜로이드 모양의 흑연·흑연 페이스트(paste)(**제3801호**)
- (d)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의 활강방지제(미끄럼방지제)(**제3824호**)와 **제3824호**의 방청조제품

34.04 -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3404.90 - 기타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왁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합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예: 본질적으로 하이드로 카본(hydrocarbon)으로 구성된 피셔-트롭쉬 왁스(Fischer-Tropsch wax)] 제조된 **제2712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또한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왁스성의 수용성 물질도 **제외한다(제3402호)**.
- (B)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동물성 왁스·서로 다른 식물성 왁스·서로 다른 그 밖의 왁스의 혼합에 의하여 얻어진 물질이나 서로 다른 종류(동물성·식물성·그 밖의 것)의 왁스를 혼합하여 얻어진 물질(예: 서로 다른 식물성 왁스의 혼합물과 광물성 왁스에 식물성 왁스를 첨가한 혼합물)·그러나 광물성 왁스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712호)**.
- (C)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성 물질·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질. 그러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왁스 (정제하거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1521호)**. 혼합하지 않은 광물성 왁스나 광물성 왁스의 혼합물(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도 **제외한다(제2712호)**.

위 (A)·(B)와 (C)에서 설명된 물질이 액체 상태의 매질(媒質: media)과 혼합하여 매질에 분산(懸濁하거나 유화)되거나 용해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405호·제3809호 등)**.

위의 (A)와 (C)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 (2) 회전점도계로 측정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추가해서, 그러한 물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 (a)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나며 ;
- (b)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
- (c) 섭씨 20°C에서
 - (i) 어떤 것은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며(그러나 찢득찢득하거나 액상은 아니다)(소프트 왁스), 그 밖의 것은 부서지기 쉬우며(하드왁스) ;
 - (ii) 이들은 투명하지는 않으나 반투명할 수도 있으며 ;
- (d)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는 분해됨이 없이 녹으며 ;
- (e) 녹는점(melting point)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지지 않으며 ;
- (f) 이들은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낮다.

이 호의 왁스들은 화학적 조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왁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폴리알킬렌 왁스(polyalkylene wax)(예: 폴리에틸렌 왁스). 이들은 포장재료·방직용 섬유 윤활제·광택제 등으로 사용한다.
- (2) 탄화수소왁스의 부분적 산화에 의하여 얻어진 왁스[합성이나 천연의 파라핀 왁스(paraffin wax) 같은 것]. 이들은 광택제·코팅제·윤활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 (3) 클로로파라핀(chloroparaffin)·폴리클로로비페닐(polychlorobiphenyl) 또는 폴리클로로나프탈렌(polychloronaphthalene)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이며, 이들은 방염가공·절연체·축전기 주입제·윤활제·목재 방부제 등으로 사용한다.
-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물에 녹으며 화장품이나 의료용품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와 방직용 섬유나 종이용의 접착제·잉크·고무의 구성제 등이 있다.
- (5) 지방성 케톤(fatty ketone)·지방성 에스테르(fatty ester)[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테르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 디스테아레이트의 혼합물]·지방성 아민·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 이들은 화장품·광택제·페인트 등에 사용한다.
- (6) 갈탄왁스와 같은 천연왁스를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화학적 변성을 하여 얻어진 왁스
- (7)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왁스(**제2712호**의 광물성 왁스 혼합물은 **제외한다**)로 구성된 왁스나 하나 이상의 왁스에 그 밖의 재료를 첨가한 것[예: 파라핀 왁스(paraffin wax)와 폴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 구성된 왁스로서 코팅 재료로 사용하는 것·파라핀 왁스(paraffin wax)와 스테아린산으로 구성된 왁스로서 양초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산화된 탄화수소 왁스와 유화제로 구성된 왁스·실링왁스(sealing wax)와 유사한 조성의 왁스-어떻게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3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위의 왁스로서 착색된 것도 여기에 분류한다.

위에서 규정한 제외규정과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라놀린 알코올(lanolin alcohol)(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제1505호**)
- (b) 수소를 첨가한 오일(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제1516호**)
- (c)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제29류**)
- (d) “치과용 왁스(dental wax)”와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이나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제3407호**)
- (e) 공업용 모노카르복시지방산과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제3823호**)
- (f) 글리세롤의 모노-(mono-)·디-(di-)와 트리-(tri-) 지방산 에스테르(ester)의 혼합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것(**제3824호**)
- (g) 혼합한 폴리클로로비페닐과 혼합한 클로로파라핀(chloroparaffin)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제3824호**)
- (h) 혼합한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예: **제3824호**나 **제3907호**)
- (ij) 폴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제3901호**)

34.05 -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20 -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3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3405.4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3405.90 - 기타

이 호에는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은·구리 등)용의 광택제와 크림, 조리용품·물 버리는 곳·타일·난로 등을 닦는데 사용하는 페이스트(paste) 상태와 가루 상태 조제품과 가죽 광택제와 크림과 같은 유사 조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호성능이 있는 광택제도 포함한다.

이러한 조제품은 왁스·연마제·그 밖의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왁스와 광택제 : 왁스에 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를 침투시킨 것이나 수성 매질(媒質 : medium)에 왁스를 유화시킨 것이며 흔히 착색제가 첨가된다.
- (2) 금속광택제와 유리광택제 : 초크나 키절구어(kieselguhr)와 같은 극히 부드러운 광택재료를 백정이나 액체비누의 유제에 현탁시킨 것이다.
- (3) 금속 등의 광택제·끝 손질제·미세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dust)를 함유하고 있는 것
- (4) 미세하게 분쇄한 모래에 탄산나트륨과 비누를 혼합한 연마 가루 : 이 연마페이스트(paste)는 이러한 연마 가루를 광물성윤활유에 왁스를 용해한 용액으로 혼합하여 만든다.

이러한 조제품은 간혹 소매용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액체 모양·페이스트(paste) 상태·가루 모양·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 등으로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cellular)플라스틱이나 셀룰러(cellular)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용 더스터와 금속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scourer)는 **제외한다(제11부와 제15부에 각각 분류한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혼합하지 않은 연마 가루(주로 **제25류나 제28류**)
- (b) 신발용 정제 호분(胡粉)과 새미가죽 신발용 조제액상염료(**제3210호**)

제6부
34.05

- (c) 데그라스(degras)와 인조 데그라스(artificial degreas)(제1522호) ; 이 이외의 가죽 완성용 오일과 그리스
(제15류·제2710호·제3403호·제3824호 등)
- (d) 의류 세탁용 “드라이클리닝(dry-cleaning)”액과 오물제거제 : 이것은 조성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
(대개 제2710호의 휘발유나 제3814호·제3824호의 물품).

34.06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양초·가는 초[구(球) 모양이나 코일 모양을 포함한다] 등은 보통 텔로우(tallow)·스테아린(stearin)·파라핀 왁스(paraffin wax)나 그 밖의 왁스로 만든다.

이러한 물품은 착색·향을 첨가·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부유물(float)이 부착된 나이트 라이트(night light)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천식약으로 사용하는 초(anti-asthmatic candle)(**제3004호**)

(b) 왁스로 만든 성냥이나 밀랍 성냥(**제3605호**)

(c)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와 초(**제3808호**)

34.07 -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A) 조형용 페이스트(paste)

이것은 보통 예술가나 세공업자가 모형을 제작하는 데나 아동의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가소성(plastic) 조제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올레산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며, 왁스·화이트오일과 고령토(kaolin)를 함유하고 약간의 기름기 감촉이 있다.

그 밖의 것은 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와 고령토(kaolin)에 결합제를 혼합한 것이다.

이러한 페이스트(paste)는 보통, 착색되어 있고 벌크 모양이나 케이크 모양·막대(stick) 모양·판 모양 등으로 제시한다.

여러 가지의 것을 구비한 조형용 페이스트(modelling paste)(아동의 놀이용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이 호에 분류한다.

(B) “치과용 왁스(dental wax)”나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로 알려진 조제품

이것은 치과에서 치형을 뜨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분의 조제품이다. 보통, 왁스·플라스틱·구타페르카(gutta-percha)에 로진(rosin)·셀락(shellac)과 충전제(예: 가루 운모)를 혼합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착색되어 있고 경질(硬質: hard)·약간 연질(軟質: soft)이다.

이러한 조제품은 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판 모양·말굽 모양(속이 찬 것이나 속이 빈 것)·막대(stick) 모양과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그 외의 모양으로 포장한 것은(예: 벌크 모양) 그 성분에 따라 분류한다(제3404호·제3824호 등).

(C)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제로 만든 것)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이 호는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2%를 초과하는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사용 가능한 첨가제는 백색 안료인 이산화티타늄·착색제·키질구어(kieselguhr)·덱스트린(dextrin)과 멜라민 수지이다. 또한 이들 물품은 응결촉진제(setting accelerator)나 지연제(retarder)를 함유하고 있다.

치과용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25% 이상의 알파-황산칼슘 반(半)수화물·대부분 알파-황산칼슘 반(半)수화물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황산칼슘 이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석고 침전물을 탈수하는 방법 등에 의해 제조된다.

이들 물품은 치아 인상용·모형 제조용이나 그밖의 치과용에 사용하며, 형태나 제시 상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한 조제품은 촉진제나 지연제만을 소량 첨가한 플라스터(plaster)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제2520호).

이 호에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료용 충전제(제3006호)를 제외한다.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효모(제2102호).
 - 나. 제30류의 혈액 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 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 조제품(제3202호)
 - 라.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 조제 세제, 제34류의 기타 물품
 - 마. 경화 단백질(제3913호).
 - 바. 인쇄공업용 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호에서 “덱스트린”이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 분해물품(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702호로 분류한다.

35.01 - 카세인(casein) · 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 - 카세인(casein)

3501.90 - 기타

(A) 카세인(casein)과 카세인 유도체

- (1) **카세인(casein)** : 밀크의 주요 단백질 성분이며, 보통 산(acid)이나 레네트(rennet)[카세인(casein) 응고 효소]로 탈지유를 침전(응고)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응결 방법의 차이에 의한 여러 가지의 카세인(casein)을 분류하고 있다. 예: 산카세인(acid casein) · 카세이노겐(caseinogen)과 레네트 카세인(rennet casein)[파라카세인(paracasein)]

카세인은 보통, 황백색의 알갱이 모양 가루이며 알칼리 용액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다. 주로 글루(glue) · 페인트 · 디스템퍼(distemper : 泥繪具)의 조제 · 종이의 코팅 · 카세인 플라스틱[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 · 인조섬유 · 식품 · 의료용품 제조에 사용한다.

- (2) **카세인산염(caseinate)**(카세인의 염) : “가용성 카세인(soluble casein)”으로 알려진 나트륨염과 암모늄염을 포함하며 ; 농축 식품과 의료용품 조제에 사용한다. 카세인의 칼슘염은 그 특성에 따라 식료품 조제나 글루(glue)로 사용한다.

- (3)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 특히 염화카세인 · 브롬화카세인 · 요드화카세인과 탄닌산카세인이 있으며 용도는 의료용이다.

(B) 카세인글루(casein glue)

이것은 카세인칼슘(calcium caseinate)[위의 카세인산염 참조] · 카세인과 초크(chalk)의 혼합물에 소량의 붕사 · 염화암모늄을 첨가한 것이며 보통 가루 모양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카세인(casein)의 귀금속 염(제2843호)이나 제2844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되는 카세인산염(caseinate)
- (b) “식물성 카세인(vegetable casein)”으로 잘못 알려진 물품(제3504호)
- (c) 소매용으로 한 카세인 글루(casein glue)로서 순 중량 1kg 이하의 것(제3506호)
- (d) 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제3913호)

35.02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 -- 건조한 것

3502.19 -- 기타

3502.2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3502.90 - 기타

(1) **알부민(albumin)** : 동물성이나 식물성 단백질이며 전자가 보다 중요하고 알의 흰자위(卵白)(오브알부민)(ovalbumin) · 혈청알부민(serum albumin) · 락트알부민(lactalbumin)과 어(魚)알부민이 있다. 카세인(casein)과 달리, 알칼리는 물론 물에도 녹으며 그 용액은 가열하면 응고된다.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乳漿 : whey) 단백질을 함유하고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를 초과하는 유장(乳漿) 단백질 농축물도 분류한다. 유장(乳漿) 단백질 함유량은 질소함유량에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6.38을 곱하여 계산한다.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乳漿)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 이하인 유장단백질 농축물은 **제0404호**에 분류한다.

알부민(albumin)은 일반적으로 점액상태 · 투명한 황색 플레이크(flake) 상태 · 백색 무정형 상태 · 담홍색이나 황색 가루이다.

이들 알부민은 글루(glue) · 식료품 · 의약품 조제 · 가죽완성 가공품 · 섬유나 종이(특히 사진용의 종이)의 처리용 · 주류 · 그 밖의 음료의 청징(淸澄 : clarification)제로 사용한다.

(2)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특히 알부민의 철염 · 브롬화알부민(brominated albumin) · 요드알부민(iodised albumin)과 탄닌산알부민(albumin tannate)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건조혈액[“혈액알부민(blood albumin)”으로 잘못 기술할 때가 있다](**제0511호**)

(b) 알부민의 귀금속염(**제2843호**)이나 **제2844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하는 알부민산염

(c) 치료나 예방용으로 조제한 혈액알부민과 인간혈장(**제30류**)

35.03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이 호의 젤라틴(gelatin)과 글루(glue)는 피·연골·골(bone)·건(腱)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동물성 물질을 보통 따뜻한 물로 산(酸)과 함께하거나 산 없이 처리하여 만든 수용성 단백질이다.

(A) **젤라틴** : 글루(glue)보다 점착성이 적고 더 정제된 것이며 물로 맑은 응고체를 형성한다. 식품·의약품과 사진유제의 조제·미생물의 배양·주류의 청징(淸澄 : clarification)에 사용한다. 또한 종이나 섬유용의 사이징·인쇄공업·플라스틱제조(경화젤라틴)와 젤라틴 제품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젤라틴은 일반적으로 얇고 투명하며 거의 무색무취의 시트(sheet) 모양(건조할 때에 사용한 망의 흔적이 남는다)이지만 슬래브·판·시트·플레이크(flake)·가루 모양 등으로 시판된다.

젤라틴의 시트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착색되었거나 표면가공(예: 유각·금속착·인쇄, 다만, 제49류에 열거한 것과 같은 젤라틴엽서와 인쇄물은 제외한다)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외의 모양(예: 원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9602호에 분류하며, 비경화 젤라틴 성형품과 조각품도 제9602호에 분류한다.

(B) **젤라틴 유도체** : 특히 탄닌산젤라틴·브롬탄닌산젤라틴이 있다.

(C) **아이징글라스(isinglass)** : 특정 물고기, 특히, 철갑상어의 부레를 기계처리하여 만든다. 이것은 고체상으로 제시하는데, 보통 반(半)투명이고 일반적으로 얇은 시트 모양이다. 주로 주류 그 밖의 알코올성 음료의 청징(淸澄 : clarification)제와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D)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 불순한 젤라틴이며 글루(glue)용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보존제·안료·점도조절제와 같은 첨가물을 함유하는 수도 있다.

주요 글루(glue)는 다음과 같다.

(1) **뼈 글루(bone glue)·피(皮) 글루(hide glue)·신경 글루(nerve glue)·근(筋) 글루(sinew glue)** : 이 글루(glue)는 황색부터 갈색까지이며 강한 냄새가 있고 보통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젤라틴보다 두껍고 단단하며 부서지기 쉬운 시트(sheet) 상태이다. 또한 비드(bead) 상태·플레이크(flake) 상태 등도 있다.

(2) **어(魚) 글루(fish glue)[아이징글라스(isinglass)는 제외한다]** : 이 글루(glue)는 어류 웨이스트(피·연골·지느러미 등)에 뜨거운 물을 작용하여 얻으며, 보통 젤라틴질 액체 상태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a)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

(b) 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로서 순 중량 1kg 이하의 것(제3506호)

(c) 젤라틴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복사용 페이스트(paste)(복사용 젤리류)(제3824호)

(d) 경화(硬化) 젤라틴(제3913호)

35.04 -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 (1) **펩톤(peptone)** : 단백질이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되거나 특정한 효소(펩신·파파인·판크레아틴 등)를 작용시켜서 얻어지는 가용성 물질이다. 보통 백색이나 황색 가루이며, 극히 흡습성이 있기 때문에 밀폐용기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펩톤(peptone)은 용액 상태의 것도 있으며 주요한 종류로는 미트펩톤(meat peptone)·이스트펩톤(yeast pepton)·혈액펩톤(blood peptone)과 카세인펩톤(casein peptone)이 있다.

이들은 의료용·식품조제·미생물 배양체 등으로 사용한다.

- (2) **펩톤산염(peptonate)** : 펩톤의 유도체이다. 주로 의약용에 사용하며 ; 가장 중요한 것은 펩톤산철(iron peptonate)과 펩톤산망간(manganese peptonate)이다.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글루테린(glutelin)과 프로라민(prolamin)**[예: 밀이나 호밀에서 얻는 글리아딘(gliadin)과 옥수수에서 얻은 제인] : 곡물단백질이다.
- (2) **글로불린(globulin)** : 락토글로불린과 오보글로불린(이 호 해설서 끝 **제외** 규정(d) 참조)
- (3) **글리시닌(glycinin)** : 주요한 대두단백질
- (4) **케라틴(keratin)** : 모발·손톱·뿔·말굽·깃털 등에서 얻는다.
- (5) **핵산단백질(nucleoprotein)** : 핵산(nucleic acid)과 결합한 단백질과 그 유도체이다. 핵산단백질은 예를 들면, 양조용 효모에서 유리되며 그 염(철·구리 등)은 주로 의료용에 사용한다.

그러나, **제2852호**에 해당하는 수은의 핵단백질은 **제외한다**.

- (6)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유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

(C)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는 천연 탄닌 물질과 식물성 탄닌 추출물(extract) 중에 있는 탄닌(tannin)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거의 순수한 콜라겐(collagen)이며 신선한 원피(fresh skin)를 주의 깊게 조제하여 만든다. 하이드 파우더는 소량의 크롬명반을 함유하거나 사용하기 직전에 크롬명반을 첨가하도록 크롬명반을 가하지 않은 하이드 파우더로 제시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처리를 한 하이드 파우더는 **제4115호**의 크롬가죽의 더스트(dust) 파우더와 가루를 혼동하여서는 안 되며 이 크롬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는 탄닌(tannin) 측정에 부적합하고 저가물품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의 혼합물로 조성된 단백질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물과 탈지대두분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만든 농축물(조제 식료품의 첨가물로 사용한다)(**제2106호**)
- (b) 단백질의 귀금속염(**제2843호**)이나 **제2844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되는 단백질산염
- (c) 핵산과 이의 염(핵산염)(**제2934호**)
- (d) 피브리노겐(fibrinogen) · 피브린(fibrin) · 혈액글로불린과 혈청글로불린 · 사람의 노말면역글로불린 · 면역혈청(특정의 면역글로불린)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제3002호**)
- (e) 이 호에 열거한 물품을 의약품으로 만든 것(**제3003호**이나 **제3004호**)
- (f) 효소(**제3507호**)
- (g) 경화(硬化) 단백질(**제3913호**)

35.05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징(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3505.20 - 글루(glue)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화학물질(예: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균을 차지하고 있다

(1) **덱스트린(dextrin)**,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전분의 분해[산(酸)이나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서 얻어 지는데,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스(dextrose)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 이하의 것에 한정하여 덱스트린(dextrin)으로 여기에 분류하며 ;
- 전분을 배소(焙燒)해서(소량의 화학 반응물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상태로) 얻어진다. 반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배소(焙燒) 전분(roasted starch)이라고 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제조 과정과 사용하는 전분에 따라 다르며 백색·담황색·갈색의 가루이며 물(필요시 적당히 가열하여)에 녹지만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2)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 전분을 덱스트린(dextrin)으로 변성시킬 때 얻어지는 중간체이며 전분을 물에 끓이거나 냉회석산으로 장시간 접촉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매우 소량의 고령토(kaolin)를 함유하고 있는 가용성 전분도 포함되는데, 주로 종이 제조공업에서 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에 첨가에 사용한다.

(3) **프리젤라티나이징(pregelatinised) 전분**과 "스웰링(膨潤 : swelling)"전분 :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리를 한 후, 이것을 건조해서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압출한 후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제지·섬유공업·야금(주물용 코어 점결제 조제용)·식품공업·동물사료용 등에 사용한다.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테르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테르화 전분은 원래 제지나 섬유공업에서 사용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변성전분.** 예:

(i) **디알데히드전분(dialdehyde starch)**

(ii) **포름알데히드나 에피클로로하이드린으로 처리한 전분** : 예 외과용 글러브파우더로 사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 호의 변성전분은 그 특성[예: 용액과 겔(gel)의 투명도·겔화하거나 결정화하려는 경향·물과의 결합능력·동결/해동시 안정성·젤라틴화 온도·최고점도]의 변화에 의해 제11류의 변성하지 않은 전분과 구별될 수 있다.

(B)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1) **덱스트린 글루(dextrin glue)**는 덱스트린(dextrin)의 수용액이나 덱스트린에 다른 물질(예: 염화마그네슘)을 혼합한 것

(2) **전분 글루(starch glue)** : 전분을 알칼리(예: 수산화나트륨)로 처리하여 얻어진 것

(3) **글루(glue)** :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붕사와 수용성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glue)나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분·붕사와 전분 에테르로 구성된 글루

위의 물품은 보통 백색·황색·담갈색의 무정형 가루나 검상의 덩어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 중 어떤 것은 “브리티쉬검(British gum)”·“스타치검(starch gum)”도 있다. 이들은 색소공업·섬유·제지공업과 야금공업에서 주로 글루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조제하지 않은 전분(**제1108호**)

(b) 전분 분해물로서 포도당으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c) 소매용으로 한 글루로서 순 중량 1kg 이하의 것(**제3506호**)

(d) 제지산업·섬유산업·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광택제와 완성가공제(dressing)[전분이나 덱스트린(dextrin)을 기본 재료로 한 것](**제3809호**)

35.06 -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3506.91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3506.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그 밖의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kg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 튜브·상자·종이백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 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나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dextrin)·알갱이 모양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나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B)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글루텐 글루(gluten glue)**(“비엔나 글루(Vienna glue)”) : 일반적으로 글루텐(gluten)을 일부 발효하여 가용성으로 한 것이다. 이들 글루는 보통 플레이크(flake) 상태나 가루 상태의 것으로서 노란색부터 갈색까지로 다양하다.
- (2) **천연 검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
- (3) **규산염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접착제**
-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 중합체에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용제(溶劑 : solvent)·안료 등]의 함유와는 관계없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로진 에스테르·변성되지 않은 천연 셀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 : 고무·유기용제·충전제·가황제와 수지의 혼합물

위의 (A)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이 품목표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 (b)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덱스트린(dextrin)(**제3505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

이 호에 분류한 물품 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모양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섬유용 조제광택제와 완성가공제(dressing) 등(**제3809호**)이나 주물용 코어 점결제(**제3824호**)이 호에서 **제외하며** ;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글루(glue)”라고 부를 때도 있으나, 접착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충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35.07 -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3507.90 - 기타

효소(enzyme)는 생체세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유기물질로서 ; 효소 자체의 화학구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생체세포의 내부나 외부에서 특정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효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화학적 조성에 따른 분류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분자의 구성이 단백질만으로 되어 있는 효소[예: 펩신(pepsin) · 트립신(trypsin) · 우레아제(urease)]
- (b) 보조 인자(cofactor)로 작용하는 저분자량의 비단백질화합물과 단백질의 결합으로 그 분자가 구성되는 효소 : 보조 인자는 금속이온(예: 아스코르베이트 산화효소 중의 구리 · 인간 태반의 염기성 포스퍼타제 중의 아연)이거나 조효소로 불리우는 복합유기분자(예: 피루베이트 데카르복실라제 중의 티아민이인산염 · 글루타민옥소애시드 아미노 트랜스퍼라제 중의 인산피리독살)인 경우가 있다. 때로는 두 가지(보조인자와 조효소)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다.

(II) 작용에 의한 분류

- (a) **화학적 활성**에 따라 산화환원효소 · 이전효소 ·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효소 · 이탈효소 · 이성화효소 · 합성효소 ; 또는
- (b) **생화학적 활성**에 따라 아밀라아제 · 리파제(lipase) · 프로테아제(protease) 등이 있다.

*
* *

이 호의 효소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순수(pure)”(분리)효소

보통 결정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의약품이나 과학적 연구목적에 쓰이며,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효소 농축물과 조제효소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은 물품이다.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 · 식물 · 미생물 ·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 · 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특정 표준화제나 안정제는 농축물 내에 이미 다소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발효액 · 청정공정이나 침전공정에서 발생한다.

농축물은 침전 또는 동결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과립화제 · 불활성의 지지물 · 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

조제효소(prepared enzyme)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육(肉) 연화용(蓮花 : tenderising) 효소 조제품[예를 들어 포도당이나 그 밖의 식품을 첨가한 단백질 분해효소(예: 파파인)로 구성된 물질]
- (ii) 맥주·포도주·과일주스를 청징(淸澄 : clarification)하기 위한 효소조제품 [예: 펙틱(pectic)효소에 젤라틴·벤토나이트(bentonite) 등을 첨가한 것]
- (iii) 박테리아성 알파아밀라아제나 프로테아제(protease)를 기본 재료로 한 직물의 풀빼기용 효소조제품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 (a) 의약품(**제3003호**나 **제3004호**)
- (b) 유연전(柔軟前 : pre-tanning)처리용 효소조제품(**제3202호**)
- (c)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enzymatic soaking preparation)·효소계의 조제세제(enzymatic washing preparation)와 **제34류**의 그 밖의 물품

*
* *

효소 중 상거래 관습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레네트(rennet : **응유효소**)(렘퍼먼트·키모신·레닌)

레네트(rennet)는 송아지의 신선하거나 건조한 제4위(胃)에서 얻거나 특정 미생물을 배양하여 얻는다. 이 물품은 밀크 중의 카세인(casein)을 응고시킴으로써 밀크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다. 레네트는 액체 상태·가루 상태나 태블릿(tablet) 모양이 있으며, 제조과정 중에 잔류하거나 표준화를 위하여 첨가된 염류(예: 염화나트륨·염화칼슘·황산나트륨)와 보존제(예: 글리세롤)를 함유할 수 있다.

레네트는 주로 치즈공업에 사용한다.

(2) 췌장계 효소(pancreatic enzyme)

췌장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효소는 **트립신(trypsin)**과 **키모트립신(chymotrypsin)**(단백질을 분해한다)·**알파아밀라아제(α -amylase)**(전분을 분해한다)와 리파제(lipase)(지방질을 분해한다)이며, 이들 효소는 주로 소화 불량을 치료하는 의약품과 의료품에 사용한다.

췌장효소 농축액은 보통 신선하거나 건조한 췌장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들은 결정수의 대부분을 흡수하도록 첨가된 고(高) 흡착성의 염(salts)과 저장·수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첨가된 보호콜로이드(protective colloid)를 함유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풀빼기제·세제·탈모제·유연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췌장효소계 조제품은 직물의 풀빼기(de-sizing) 용품을 포함한다.

(3) **펩신(pepsin)**

펩신(pepsin)은 돼지나 소의 위점막에서 얻어지며 안정화를 위해서 때로는 황산마그네슘의 포화용액에 저장되거나 자당·젓당과 혼합된 것이 있다(가루로 된 펩신).

펩신은 주로 염산이나 염산 베타인과 결합시켜 의약용으로 사용하거나 펩신 와인(pepsin wine)으로서 사용된다.

(4) **맥아효소**

이 그룹에는 **단지 맥아아밀라아제만을 포함한다.**

맥아추출물(malt extract)은 **제1901호**에 분류한다.

(5) **파파인(papain)·브로멜라인(bromelain)·피신(ficin)**

파파인(papain)이란 용어는 파파야나무[카리카 파파야(Carica papaya)]의 유액 건조물과 이 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분획물[즉, **파파인(papain)**(제한적인 의미에서)과 **키모파파인(chymopapain)**] 모두를 칭하는데 사용된다.

파파인은 예를 들어 내냉장성(chillproof) 맥주의 제조·육(肉)연화제용(상기(C) (i) 참조)·의약용 등에 사용한다.

건조 라텍스로서 오직 부분적으로 수용성인 파파인은 **제1302호**에 분류한다.

브로멜라인(bromelain)은 파인애플나무에서 얻는다.

피신(ficin)은 특정한 무화과나무의 라텍스에서 얻는다.

(6) **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아제(α-amylase)와 프로테아제(protease)**

특정 미생물은 적당한 배양기에서 배양하면 상당량의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를 분비한다.

세포와 그 밖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용액을 저온진공증발에 의하여 농축하거나 무기염(예: 황산나트륨)이나 물에 섞일 수 있는 유기용제(예: 아세톤)를 첨가하여 효소를 침전시킨다.

미생물성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세균성 알파아밀라아제**

세균성 알파아밀라아제[예를 들어 고초균(枯草菌: *Bacillus subtilis*)을 사용해서 얻는 것]은 전분 액화효소로서 집착제·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종이 도포제의 제조·제빵과 그 밖의 식품공업·직물의 풀빼기(desizing)제로 사용한다.

(b) **곰팡이 아밀라아제**

곰팡이 아밀라아제는 주로 리조프스(*Rhizopus*)속이나 아스펠길루스(*Aspergillus*)속의 곰팡이를 배양함으로써 얻어지는 알파아밀라아제이다.

이것의 액화력은 큰 편이지만 세균성 아밀라아제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진다.

곰팡이 아밀라아제는 식품공업에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곰팡이 아밀라아제는 때로는 프로테아제·글루코스산화효소·인베르타아제(invertase)를 함유하고 있기도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c) **아밀로글루코시다제 (amylglucosidase)**

이 효소는 예를 들면, 리조프스(*Rhizopus*)속이나 아스펠길루스(*Aspergillus*)속의 곰팡이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강력한 당화제이지만 액화력은 없다. 이것은 전분물질로부터 텍스트로스(dextrose)를 고수율(高收率 : high yield)로 얻는데 사용한다.

이 효소의 주 용도는 포도당 시럽과 텍스트로스(dextrose)의 제조이며, 곡물 알코올 발효 매쉬(mash)에 대한 당화제(saccharifying agent)로 사용한다.

(d) **프로테아제 (protease)**

세균성 프로테아제(bacterial protease)는[예를 들어 고초균(枯草菌 : *Bacillus subtilis*)형의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서, 직물 풀빼기(desizing)제의 제조·특정 조제 세제와 맥주 제조에서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한다. 곰팡이로부터 생산되는 프로테아제는 의약품과 의료용으로 사용한다.

(7) **베타 아밀라아제 (β -amylase)**

이 효소는 맥아맥·밀·대두와 같은 식물성 원료로부터 얻는다. 이것은 전분과 텍스트린(dextrin)으로부터 맥아당(maltose)을 생산한다.

(8) **펙틱효소(pectic enzyme)**

이 효소는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 주로 리조프스(*Rhizopus*)속이나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속의 것을 배양하여 생산한다. 이것은 과실이나 야채 주스의 제조(압착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주스분의 회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와 가공공정에 사용한다.

(9) **전화효소(베타-프루토폴라노시다제)[invertase(β -fructofuranosidase)]**

전화효소(invertase)는 보통 하면발효양조효모로부터 얻는다.

이 효소는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며, 골든 시럽·초콜릿·마지판(marzipan)의 제조에 사용한다.

(10) **포도당 이성화효소(glucose isomerase)**

이 효소는 특정 미생물, 주로 스트렙토마이세스(*Streptomyces*)속이나 바실러스(*Bacillus*)속의 것을 배양시켜서 얻는다. 이것은 고당도의 시럽을 제조하는 경우에 포도당을 부분적으로 과당(fructose)으로 전화시키는데 사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그 밖의 제외 규정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효모(제2102호)

(b) 코카르복실라제(coccarboxylase)(에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조효소(coenzyme)(제29류)

(c)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 gland)과 그 밖의 물품

(d)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혈액효소(예: 트롬빈)·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결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부분)와 그 밖의 물품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주 제2호가목이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모양으로 포장한 것(예: 태블릿(tablet) 모양,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연료와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한정한다)
 - 나.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 다. 수지 토치(torch)·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총설

이 류에는 **화약류와 폭약류를 포함한다**. 즉, 이 물품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함유하며 연소할 때 고온에 대량의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혼합물이다.

또한 화약과 폭약의 점화에 필요한 보조조제품(전관, 뇌관 등)도 이 류에 분류한다.

폭발성, 발화성이나 가연성의 조제품으로서 빛·소리·연기·불꽃이나 스파크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도(예: 불꽃제품·성냥·페로세륨과 특정 조제 연료)이 류에 분류한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보통 **제28류, 제29류**)[다만, 제3606호 해설서(II)(A), (II)(B)(1)와 (II)(B)(2)에서 설명된 특정연료는 예외이다]. 또한 **제93류**에 해당되는 총포탄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36.01 - 화약

이들 화약(propellant powder)은 혼합물로서, 그 연소에 의해 대량의 열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가스는 추진효과를 일으킨다.

화기용의 화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정한 부피의 것을 밀폐된 공간 내에서 연소하여 화기의 총신 내에서 발생된 압력이 발사체에 고속을 부여해 준다.

로켓용 화약의 경우, 연소에 의해 일정한 압력을 생산하여 노즐을 통한 가스의 배출이 추진 효과를 일으킨다.

이 호의 화약은 연소성 성분과 연소보조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들은 연소율(rate of combustion)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성분을 함유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흑색화약(권총화약)[black powder(gunpowder)]

흑색화약은 질산칼륨이나 질산나트륨·황과 목탄의 잘 섞인 혼합물로 구성된 것이다.

흑색에서부터 갈색까지 그 색깔이 다양한 이 화약은 다소 흡습성이며 운동경기용과 폭파용으로 사용한다. 운동경기용의 경우, 이것은 둥글고 균일한 알갱이 모양으로 제시하며 폭파용의 경우 그 알갱이 모양체는 다양한 크기이거나 분쇄될 것일 수도 있다(광산용 폭약).

(2) 화기용 화약(흑색화약은 제외한다)

(a) 무연화약(smokeless powder)

이들은 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며, 보통 면화약(gun-cotton)이나 폭발성 니트로셀룰로오스에 그 밖의 물품과 특히 디페닐아민과 같은 안정제를 첨가한 것을 기본 재료로 한다. 이들 화약은 니트로셀룰로오스와 용제에서 제조하거나, 니트로셀룰로오스와 용제(溶劑: solvent)에 질산바륨이나 질산칼륨·알칼리성 중크로뮴산 등을 첨가한 것에서 제조되거나, 니트로글리세롤(글리세롤트리니트레이트)과 니트로셀룰로오스의 분자 회합에 의해 제조(혼성무연화약·끈 모양의 무연화약 등) 될 수도 있다.

무연화약은 보통 막대기(stick)·튜브·디스크·플레이크(flake)·알갱이 모양으로 제시한다.

(b) 복합화약(composite powder)

복합화약에서는 니트로구아니딘·헥소겐(1,3,5-트리니트로-1,3,5-트리아지네인)·옥토겐(1,3,5,7-테트라니트로-1,3,5,7-테트라조케인)과 같은 첨가제가 기본 물품(니트로셀룰로오스·니트로글리세롤)에 이들의 연소성을 개량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이다.

동일한 성분과 결합된 중합 접결제(polymeric binder)(어떠한 니트로셀룰로오스도 함유하고 있지 않는)는 화약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로켓용 화약

(a) 균질화한(homogeneous) 화약

이들은 본질적으로 니트로셀룰로오스와 유기질산염에 그 밖의 물품(안정제·폭발 촉매제 등)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원기둥 모양의 장약으로 제시하며 이것은 카트리지(cartridge)형으로 연소실에 장전되어진다.

(b) 복합(composite)화약

이들은 연소를 지원하는 물품(과염소산암모늄·질산암모늄 등)과 환원제(보통 합성고무)·그 이상의 금속성 환원제(알루미늄 등)로 구성된 물품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보통 제28류나 제29류)
- (b) 제3602호의 폭약(prepared explosive)
- (c) 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셀룰로오스). 예: 면화약(제3912호)

36.02 -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연소할 때 화약이 산출해 내는 것보다 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연소에 의해서 고온의 가스를 극대량으로 분출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막대한 압력을 일으킨다. 지둔제(phlegmatising agent)는 충격이나 마찰에 대한 그들의 민감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 물품에 종종 첨가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글리세롤의 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세롤)와 에틸렌글리콜의 질산염(니트로글리세롤)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 : 이들 물품은 흔히 다이ना마이트(dynamite)라고 하며, 종종 나이트로셀룰로오스(면화약) · 질산암모늄 · 이탄(泥炭 : peat) · 목재 가루(木粉 : wood flour) · 염화나트륨 · 알갱이 모양화한 알루미늄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2) **그 밖의 유기질산염이나 니트로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 : 다음과 같은 것을 기본 재료로 한 복합물을 예로 들 수 있다. TNT(2,4,6-트리니트로톨루엔) · 헥소젠 · 옥토젠 · 테트릴(엔-메틸-엔 · 2,4,6-테트라니트로아닐린) · 펜트리트(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 · PETN) · TATB(1,3 5-트리아미노-2,4,6 트리니트로벤젠)

TNT 기본 재료의 혼합물은 왁스나 중합성 접결제로 지둔화(phlegmatised)한 헥소리트(hexolite)(TNT + 헥소젠)와 펜톨리트(pentolite)(TNT+PETN)를 포함한다.

(3) **글리세롤니트레이트나 글리콜니트레이트 이외의 물품으로 폭발을 민감하게 한 질산암모늄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 : 앞에서 설명한 (1)에서 규정한 다이나마이트와 함께, 이들은 광산 · 채석장과 토목공사장에서 널리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암모날(ammonal) · 아마톨(amatol)과 질산암모늄 연료유(ANFO : ammonium nitrate fuel oil) ;

(b) 특별하게 카트리지화한 질산염처리 폭약 ;

(c) 슬러리 폭약(slurry explosives) : 이는 질산염 알칼리와 물의 혼합물로 구성되며 질산염 아미노나 곱게 가루화한 알루미늄으로 민감하게 하는 것 ;

(d) “에멀전(emulsion)” 폭약 : 이는 질산염 알칼리의 수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물유로 유화한 것

(4) **염소산염이나 과염소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 예: 광산과 채석장에서 사용하는 체다이트(cheddite)

(5) **기폭제(primary or initiating compositions)** : 이것은 앞에서 규정한 네 개의 그룹의 폭약보다도 충격과 마찰에 대해 건조 상태에서 더욱 민감하다. 이들은 주로 아지화납이나 트리니트로레소시네이트(스티프네이트)로 납과 테트라젠(tetrazene)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다. 이들 폭약은 보통 격발용 조제품 · 발사화약 장약용 마찰 · 불꽃뇌관 · 폭약용 뇌관으로 사용한다.

이들 모든 폭약은 가루 · 알갱이 모양(granule) · 페이스트(paste) · 슬러리(slurry) · 에멀전(emulsion) · 다소 건조한 겔(gel) · 벌크 · 장약(charge)형 · 카트리지(cartridge)형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비록 폭약으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이들 화학품은 보통 **제28류나 제29류**에 예를 들면, 무기질산염(**제2834호**) · 뇌산수은(**제2852호**) · 트리니트로톨루엔(**제2904호**)과 트리니트로페놀(**제2908호**) 등으로 포함한다.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 3603.10 - 도화선
- 3603.20 - 도폭선
- 3603.30 - 격발뇌관(percussion cap)
- 3603.40 - 뇌관(detonating cap)
- 3603.50 - 점화기
- 3603.60 - 전기뇌관

보통 폭과용 부속물(lasting accessories)로 불리는 이들 물품은 화약과 폭약에 점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으로 분류한다.

(A) 도화선(Safety fuse)

도화선[슬로우퓨즈(slow fuse)나 비크포드 퓨즈(Bickford fuse)]은 보통의 점화기나 뇌관에 불꽃을 전도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보통 이들은 타르를 칠하거나 고무·플라스틱을 침투시킨 얇은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봉투에 직선형으로 장전된 흑색화약을 넣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B) 도폭선(Detonating cord)

도폭선(Detonating cord : detonating fuse, detcord, primer cord라고도 부른다)은 한 번 이상의 폭발을 전도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 재료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수피복 [플렉시블 퓨즈(flexible fuse)]에 PETN[펜트리트(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로 된 심(core)이나 그 밖의 폭약을 넣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PETN은 초당 약 6.5 km(4마일)의 속도로 폭발한다. 도폭선은 대부분의 상업용 고성능 폭약[다이나마이트, 젤리그나이트(gelignite), 감응형 겔(sensitized gel) 등]을 기폭(起爆)시킬 수 있지만, ANFO(질산암모늄 연료유)와 같이 감응성이 덜한 폭과제는 그 자체로는 기폭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광산·채석장·토목공사장에서 대부분 사용된다.

(C) 격발뇌관(percussion cap)

- (1) **격발뇌관(percussion cap** : percussion primer) : 이것은 작은 용기(보통 금속으로 만든다)로 되어 있는데, 이 용기는 보통 트리니트로레졸린[스티프네이트(styphnate)] 납을 기본 재료로 하여 테트라젠(tetrazene)과 여러 가지 산화제·환원제를 첨가한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 이러한 폭발성 혼합물로 된 장약의 무게는 보통 10mg부터 200mg까지이다. 이들 뇌관은 탄피의 밑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고 화약의 점화에 사용한다. 격발뇌관은 작은 것은 피스톨(pistol)용으로, 보다 큰 것은 라이플(rifle)과 머스킷(musket)용으로 제조된다.
- (2) **마찰격발뇌관(friction percussion cap)**이나 **점화관(firing tube)** : 보통 중심이 동일한 금속이나 판지로 된 두 개의 튜브에 각각 다른 장약을 넣은 것으로 구성된다. 톱니 모양의 와이어(wire)를 잡아당기면 안쪽 튜브에 있는 폭발성 장약에 점화되고 점화를 전도하는 두 개의 관 사이에 있는 장전 화약에 불이 붙는다. 점화관은 앞 (1)에서 설명된 뇌관과 같이 추진체를 점화하는데 사용한다.

(D) **뇌관(detonating cap)(전기식·전자식 뇌관은 제외한다)**

뇌관[detonating cap(blasting cap, detonator)]은 보호캡슐 아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안에 있는 작은 양의 1차 폭약 장약과 또 다른 장약[예: PETN(펜트리트(penthrite))·헥소겐(hexogen)이나 테트릴(tetry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화약 이외의 조제 폭발물의 점화에 사용하며, 보통 불꽃을 뇌관으로 유도하는 도화선 불꽃에 의해서 점화된다.

(E) **점화기(igniter)**

- (1) **전기식 점화기** : 이것은 전기퓨즈헤드와 소량으로 충전한 점화화약(보통 흑색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퓨즈헤드는 전기적 저항브리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그 끝에 전도성 금속 필라멘트가 납땜되어 있는 두 개의 절연 도선(導線)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러한 필라멘트는 점화기 비드(igniter bead)에 박혀 있다. 이것은 장약을 점화하거나 일차 폭약을 기폭(起爆)하는데 사용한다.

- (2) **화학식 점화기** : 예를 들면, 안에 화학약품(예: 황산)을 넣은 유리제 앰플을 포함하는 실린더와 염소산칼륨으로 된 장약으로 구성되고 금속 막으로 이 둘을 분리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앰플이 깨뜨려지면서 산(酸)이 금속 막(지연 요소로 작용한다)을 부식시키고 염소산칼륨과 반응하여 장약이나 도화선을 점화할 수 있는 강한 열을 발생시킨다.

(F) **전기뇌관(전자뇌관을 포함한다)**

- (1) **전기뇌관(electric detonator)** : 금속(가능한 경우 플라스틱)제의 튜브에 들어 있는 앞에서 설명한 (E)(1)에 규정한 전기 퓨즈헤드·소량으로 충전된 1차 폭약(보통 아지드화납을 기본 재료로 한 50mg부터 500mg까지의 복합물)과 다소 많이 충전된 다른 폭약[예: PETN[펜트리트(pentrite)]·헥소겐(hexogen)·테트릴(tetryl)]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그룹에는 **전기 프라이머**로 알려진 특정 전기뇌관을 포함한다. 이들은 흔히 소형화되어 있으며, 퓨즈헤드는 1차적인 합성물에서 그 합성물에 전도성을 주고 유도(induction)에 의해 그것이 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첨가제(additive)의 혼합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 (2) **전자뇌관(electronic detonator)** : 위의 (F) (1)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전기뇌관과는 달리, 전자 뇌관에는 지연 방법으로 집적 회로(IC) 타이머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정확한 지연 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파라핀을 도포한 점화약의 스트립(strip)이나 롤(roll)로서 광산용 램프에 사용하는 것·장난감 권총알 (**제3604호**)
- (b) 폭약이나 가연성 장약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소형 탄두·튜브·전기장치 등) : 그 성상(性相 : nature)에 따라 각각의 호에 분류한다.
- (c) 총포탄용 도화선과 카트리지케이스(뇌관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306호**)

36.04 -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rain rocket)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 - 불꽃제품

3604.90 - 기타

이 호에는 빛 · 소리 · 가스 · 연기발생 · 방화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오락용 불꽃제품

- (a) **불꽃제품**[폭탄 · 퓨즈 · 머룬(maroon) · 제트(jet) · 양초 · 횃불 · 벤갈 성냥과 등불 등]. 이것의 목적은 이들의 연소에 의한 소리 · 빛 · 연기 발생 효과를 통해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물품에 통합되어 있고 전기퓨즈나 시발체(始發體 : primer) 퓨즈에 의해 점화되는 흑색파우더와 같은 점화파우더에 의해 점화가 보장된다.
- (b) **완구용 화공품**. 예: 장난감 권총알[테이프 · 시트(sheet) · 롤이나 둥근 플라스틱 링에 조제되어 있는] · 마법양초와 크리스마스 폭죽용 스냅. 이들 화공품의 연소는 단지 제한된 효과를 발생한다.

(2) 기술적인 장치

- (a) **음(音)이나 광(光)에 의한 신호용 장치**. 예: 바다에서 사용하는 조난로켓 · 항공기 장비용의 포토플래시 카트리지(photo-flash cartridge) · 베리 불꽃(Very flare) · 안개 증 신호용품과 철도용 횃불 · 개인용 조난로켓 · 영화나 텔레비전 등의 발광 효과제 · 발광장치 · 안내장치 · 불꽃유인물과 연기발생장치(대개 착색되어 있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비교적 장기간 빛 · 소리 · 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b) **농업용이나 공업용 장치**. 예: 우박방지 로켓 · 우박방지 카트리지 · 농업용 연기발생기 · 동물을 위협하여 쫓는 천둥 플래시와 파이프라인에서 가스누출 시험용의 연기발생 장치

또한 이 호에는 앞의 그룹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화공품 장치**(예: 구명밧줄 로켓 · 폭발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단용의 납으로 도포된 폭발코드)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사진용 섬광재료(**제3707호**)
- (b) 화학발광 현상에 의하여 조명 효과를 내는 물품(**제3824호**)
- (c) 리베팅 공구용이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시동용의 폭약에 들어있는 공포(空包 : blank cartridge) (**제9306호**)

36.05 -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거친 표면(불꽃이 생기도록 특별히 만들 때도 있다)에 문질러 불꽃이 생기는 성냥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목재·판지·방직용 섬유실로 된 축에 스테아린 왁스(stearin wax)·파라핀왁스(paraffin wax) 등을 침투시키고[왁스매취(wax match)나 베스타(vesta)(짧은 성냥의 일종)] 머리 부분에 여러 가지의 가연성 약품을 붙인 것이다.

이 호에서는 마찰 점화되고 성냥의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벵골(Bengal) 성냥과 그 밖의 화공품은 **제외한다(제3604호)**.

36.06 - 페로세륨 ·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 액화 가스연료

3606.90 - 기타

(I) 페로세륨(ferro-cerium) ·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발화성 합금(pyrophoric alloy)은 거친 표면에 마찰하면 가스 · 석유 · 부싯깃(tinder) · 그 밖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도록 충분한 불꽃을 일으키는 합금이다. 보통, 세륨과 그 밖의 금속을 결합한 것이며 페로세륨(ferro-cerium)이 대표적이다.

이들 합금은 라이터돌[mechanical lighter(lighter flint)]용의 벌크상태나 소형봉 형태 · 소형 바 형태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소매용 소형용기에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II) 가연성 재료의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에만 한정하여** 분류한다.

(A) **액체 연료나 액화가스 연료**(예: 석유 · 액화부탄) : 흡연용이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용으로 서 충전이나 재충전하기 위한 종류의 용량이 300cm³ 이하의 용기(앰플 · 병 · 캔 등)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흡연용이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충용 카트리지가 그 밖의 용기(연료가 들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613호)**.

(B) **다음의 고체 연료**

(1) 메타알데히드(메타 연료)와 헥사메틸렌테트라민(헥사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태블릿(tablet) 모양 ·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 그 밖의 모양(예: 가루 · 결정형)으로 만든 경우에는 이들 물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각각 **제2912호**나 **제2933호**에 분류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태블릿(tablet) 모양 ·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유사한 화학물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 **다음의 고체 연료나 반고체 연료**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하여 비누 · 젤라틴질의 물질 · 셀룰로오스유도체 등을 포함시킨 연료(이 연료는 때때로 “고체화된 알코올(solidified alcohol)”로 거래된다)와 그 밖의 유사한 조제 연료로서 고체나 반고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후자에 속하는 고체의 조제 연료의 한 예로서 목탄가루에 매우 낮은 비율의 질산나트륨(연소보조제)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결합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막대(stick) 모양의 물품이 있다. 그 물품은 거의 밀폐된 용기 내에서 천천히 연소하게 되어 있는데, 옷 속에 넣고 다니면서 온기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빛이나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발열반응(예: 산화촉매에 의한 철가루의 산화)에 의해 열을 발생하는 일회용 손(발)난로는 **분류하지 않는다(제3824호)**.

(D) **수지 토치(resin torch) · 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i) **수지 토치(resin torch)** : 비교적 장시간 동안 빛을 내며 가연성 물질에 수지 · 아스팔트 · 피치(pitch) 등을 침투시킨 것으로서 보통 막대(stick)나 손잡이에 붙이거나 종이 ·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에 싸여 있다.
- (ii) **불쏘시개(firelighter)** : 짧은 시간에 격렬히 타서 연료(나무 · 석탄 · 코크스 · 연료유 등)에 불을 붙인다. 이 물품은 예를 들어 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에 등유와 물을 첨가하거나 종이에 광유(mineral oil)나 파라핀왁스(paraffin wax)를 침투시켜서 만든다.

그러나 연료[예: 톱밥을 응결하여 만든 брикет(briquette)]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01호)**.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주:

1. 이 류에서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감열성을 포함한다)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총설

제37류에 해당되는 사진용 플레이트(plate), 필름, 종이, 판지와 직물은 단색이나 천연색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파티클(또는 핵) 방사선은 물론 광자(광) 감광선 물질이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이나 그 밖의 방사선 [즉, 파장이 약 1,300 나노미터 이하의 방사선](감마선, X-선, 자외선과 근 적외선을 포함한다)으로 감광되는 하나 이상의 유제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플레이트(plate)는 유제를 도포하지 않고 전체나 대부분이 감광성의 플라스틱 물질(지지물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적외선 레이저 감응식 플레이트(Infrared laser sensitive plate)는 열감응식 플레이트(thermosensitive/thermal plates나 heat sensitive plates)라고도 한다.

가장 보편적인 유제(emulsion)는 할로겐화은(브롬화은, 요드브롬화은 등)이나 그 밖의 귀금속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그 밖의 물질 예를 들면, 청사진용으로 페리시안화칼륨과 그 밖의 철화합물, 사진제판용 등에는 중크로뮴산칼륨이나 중크로뮴산 암모늄을, 디아조에멀전에는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A) 이 류에 해당하는 **플레이트(plate)와 필름(film)**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1) 노광하지 않은 것(unexposed) : 즉, 광선이나 그 밖의 방사선의 작용을 아직 받지 않은 것 또는
- (2) 노광한 것(exposed)으로서, 현상한 것(즉, 화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도록 화학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플레이트(plate)와 필름(film)은 네거티브[즉, 광(光)과 음(陰)이 역(逆)으로 된 것], 포지티브(포지티브 복제용 라벤다 포지티브를 포함한다), 리버시블(즉, 직접 포지티브를 만드는 특수 유제를 사용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이 류에 해당된다.

(B) **사진용 종이, 판지와 직물**은 노광하지 않은 것, 노광된 것(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은 현상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류에 포함되며 ; 현상한 것은 **제49류**나 **제11부**에 분류한다.

제3707호 해설에서 설명된 조건에 합치되는 사진에 사용하는 종류의 화공약품과 섬광재료는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이 함유된 사진용이나 영화용 필름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7112호**에 분류한다. 그 밖의 사진용이나 영화용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예: 플라스틱인 경우는 **제3915호**, 종이일 경우는 **제4707호**에 분류한다).

37.01 -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 · 판지 · 식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 - 엑스선용

3701.2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701.3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3701.91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1.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평면 모양의 사진플레이트와 평면 모양 사진필름(종이 · 판지 · 식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평면 모양의**(즉, 롤 모양이 아닌 것) 플레이트와 평면 모양의 필름(디스크 모양으로 된 필름을 포함한다)은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통 **감광성** 사진유제를 도포한 것이다. 이들은 종이[네거티브 생산용 종이 플레이트(plate)] · 판지 · 식물로 **제외한** 여러 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제3703호**). 보통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유리 · 초산셀룰로오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그 밖의 플라스틱[필름 팩(pack)용이나 커트(cut)필름용]과 금속 · 석(石)(사진제판용)이 있다. 노광 처리될 때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플레이트는 자체가 (대부분이나 전부) 감광성의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제를 도포하지 않는다. 금속이나 그 밖의 물질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종류의 플레이트 중 어떤 것은 노광하기 전에 감도(degree of sensitivity)를 증가시키는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다른 플레이트는 조사(照射) 후에 조사된 부분의 경화도(degree of hardening)를 (열(熱)적으로) 증가시키는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품은 다음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 (1) 일반용이나 전문가용 플레이트(plate) · 커트(cut) 필름과 필름 팩(film pack)
- (2) X선용 플레이트(plate)와 평면 모양 필름(치과방사선 사진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양면이 감광성(sensitised)으로 되어 있다.
- (3) 사진제판용 플레이트 : 사진 제판용 · 사진 석판용 등으로 사용하는 형의 것
- (4) 특수 플레이트와 필름으로서 현미경 사진 · 광현미경 사진 · 천문학 · 우주선용 사진 · 항공사진 등에 사용하는 것

(B)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이것은 또한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서 평면 모양이다.**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은 어떠한 재료로 된 감광성 시트(sheet)(네거티브)·특별히 처리한 종이로 된 시트(sheet) (포지티브)·현상제(developer)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완성된 포지티브 사진의 인스턴트제작을 위한 것이다.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은 직접 카메라나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시트를 함유하고 있는 박스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팩(pack) 모양으로 [몇 개의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시트를 가지고 있는 카트리지(cartridge)나 캐니스터(canister)]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롤 모양의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감광성의 것으로서 노광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제3702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비감광성 플레이트와 평면 모양 필름(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노광하지 않은 롤 모양 필름(**제3702호**)

37.02 -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 - 엑스선용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31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32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3702.39 -- 기타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702.41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2.42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3702.43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3702.44 --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52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3702.53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3702.54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3702.55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3702.56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기타

3702.96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3702.97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초과인 것

3702.98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롤 모양 사진필름(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노광하지 않은 감광성의 롤 모양 사진필름(즉, 평면 모양은 **제외한다**)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초산셀룰로오스나 이와 유사한 유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사진 촬영에 많이 쓰인다. 이 호에서는 종이[예: 네거티브제작용 종이 “필름(film)”]·판지·직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제3703호)**.

롤 모양 필름은 스프로킷 구멍(perforation)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 종이를 뒷면에 붙이거나 그 밖의 적당한 포장을 해서 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영화용 필름(정상폭의 것인 35mm·16mm·9.5mm·8mm)
- (2) 롤 모양 “정지(still)”화상 카메라필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절단하지 않은 사진용 필름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필름은, 제3701호의 사진 플레이트(plate)와 같이, 일반용·전문가의 사진제판용·과학용·방사선 사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롤 모양의 엑스선용 필름은 보통 양쪽면에 감광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광전녹음용의 감광성 필름도 이 호에 분류한다.

(B)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은 완성 포지티브 사진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필름은 어떠한 재료[예: 아세트산 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나 그 밖의 플라스틱·종이·판지·직물]로 된 감광성 필름(네거티브), 특수 처리된 스트립(strip)지(포지티브)와 현상제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감광성의 노광하지 않은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은 **제외한다(제37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평면 모양의 사진플레이트와 필름으로서 노광되지 않은 것(**제3701호**)
- (b)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감광성 필름(**제39류**)
- (c) 기계식 녹음용의 조제한 녹음되지 않은 필름(**제8523호**)

37.03 - 사진 인화지 · 판지 ·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 - 롤 모양(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703.20 - 기태[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3703.90 - 기타

이 호에는 평면 모양이나 롤 모양의 모든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인화지 · 판지 · 직물을 분류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포지티브 사진인화용 종이와 직물 : 이것은 일반용 · 전문가용 · 엑스선용 · 심전계용 · 기록용 · 사진 복사용 등에 사용한다.
- (2) 일명 종이 “플레이트(plate)”와 종이 “필름(film)” : 카메라내 노출에 의해 네거티브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 (3) 페리시안화(ferricyanide) 종이 · 페로갈산(ferro-gallate) 등의 종이 : 청사진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감광성의 노광하지 않은, 롤 모양이나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제3701호나 제3702호**)
- (b) 노광되었으나 현상하지 않은 사진 종이 · 판지 · 직물(**제3704호**)
- (c) 감광성이 없는 가공된 종이 · 판지 · 직물. 예: 알부민(albumin) · 젤라틴 · 황산바륨 · 산화아연 등으로 도포한 종이(**제48류나 제11부**)
- (d) 사진용 종이 · 판지와 직물로서 현상한 것(**제49류나 제11부**)

37.04 -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3701호 · 제3702호 · 제3703호에 열거된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종이 · 판지와 직물을 **노광한 것(exposed)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not developed)을 분류한다.** 이 물품은 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의 것(반전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현상된 플레이트(plate) · 필름 · 종이 · 판지 · 직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705호와 제3706호 · 제49류 · 제11부).**

37.05 -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3701호나 제3702호에 열거된 사진용 플레이트와 필름이 **노광되고 현상된 것**을 분류한다. 단, 스프로킷 구멍(perforation)이 있는 것은 정지 화상의 재생용이나 영사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양자를 분류하며 ; 후자는 그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슬라이드(diapositive)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 호에는 투명베이스(transparent base)(마이크로필름)의 마이크로카피(microcopy)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명암 흐리기(graduated)[혹은, “음영제거(shade-off)”] 밀착 망판(halfton) 필름스크린(일반적으로 바둑판 모양의 많은 점으로 된 것)과 사진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그 밖의 스크린으로서 그래픽 예술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영화 제작용 프로젝터에 사용하는 종류의 필름으로서 현상한 것(**제3706호**)
- (b) 현상한 사진용 종이·판지·직물(**제49류나 제11부**)
- (c)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쇄용[예: 오프셋(offset)]의 현상한 플레이트(**제8442호**)

37.06 -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3706.90 - 기타

이 호에는 표준이나 표준 이하 폭의 현상된 네거티브 영화용 필름·포지티브 영화용 필름으로서 관련된 영상만 있는 것이나 관련된 영상과 사운드트랙이 모두 함께 있는 것을 분류한다 [광전식이나 비광전식[예: 자기(磁氣)식으로 녹음된 것]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표준이나 표준 이하 폭의 **현상한** 영화용 필름(네거티브의 것이나 포지티브의 것)으로서 화면이 없고 **오직** 하나 이상의 사운드트랙(sound track)이 **있는** 필름을 분류한다. 필름에 있는 트랙이 단일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은 반드시 광전식으로 녹음된 것이며 둘 이상의 사운드트랙이 있는 필름에는 자기식으로 녹음된 트랙이 포함될 수 있으나 적어도 하나의 트랙은 반드시 광전식으로 녹음된 것이어야 한다. 광전식으로 녹음된 트랙은 음향진동을 재생하는 좁은 인쇄 밴드(printed band)로 나타나 있다.

광전녹음식(photoelectric) 이외의 방법(예: 기계적 조판이나 자기녹음)으로만 제작된 사운드트랙 필름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23호)**.

37.07 -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ernish) · 글루(glue) · 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 - 감광유제

3707.90 - 기타

이 호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 상(photographic image)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유제(emulsion)**(이 류 총설 참조)
- (2) **현상제(現像劑 : developer)** : 잠재된 사진 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예: 히드로퀴논 · 카테콜 · 피로갈롤 · 페니돈 · 파라-엔-메틸아미노페놀술페이트와 이들의 유도체). 또한 이 호에는 정전(electrostatic) 기록 문서재생용의 현상제도 포함한다.
- (3) **정착제(fixer)** : 현상된 화상을 불변하게 하는 것[예: 티오 황산나트륨(하이포) · 메타 중아 황산나트륨 · 티오황산 암모늄 · 암모늄 · 나트륨 · 칼륨의 티오시아네이트]
- (4) **증도제(intensifier)와 감도제(reducer)** : 화상의 명암도를 증감시키는 것(예: 중크로뮴산 칼륨 · 염화제이수은 · 과황산암모늄)이다.
그러나 수은염화물은 비록 인쇄용에 사용하도록 일정량씩 포장되었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용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제2852호에 분류한다.
- (5) **조색제(toner)** :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예: 황산나트륨)
- (6) **세정제(clearing agent)** : 현상 · 정착 등의 처리과정 중 생기는 흠을 제거하는 것(예: 칼륨 명반)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의 조건에 합당한 **섬광재료**도 이 호에 분류하며, 이 섬광재료는 알루미늄 · 마그네슘의 가루 · 정제(tablet) · 박(箔 : foil)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때로는 연소를 촉진시키는 그 밖의 물질과 혼합 될 때도 있다.

위의 물품은 모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단일물질의 것

- (i)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즉, 사용될 양을 일률적으로 소분한 것이다. 예: 등글넉적(tablet) 하거나 가루 모양의 현상약을 일회 사용량으로 된 것
- (ii)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과 레이블 · 문헌이나 그 밖의 방법(예: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

위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된 단일 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28류나 제29류에 열거된 화학물질 · 제15부에 해당되는 금속 가루 등).

(B) 두 가지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하거나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 이러한 조제품은 벌크(bulk)이거나 소량이든 이 호에 분류한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사진상 · 청사진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조재료[예: 사진첩부용 접착제 · 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바니시(vernish) · 수정용 페인트 · 연필 등]
- (b) 제9006호의 사진용 섬광진구(flashbulb)
- (c)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열거된 물질[예: 귀금속의 염(salt)과 그 밖의 물질](소매용으로 포장하였고 의도된 용도가 무엇인지에 상관없다).



[소호해설]

소호 제3707.90호

소호 제3707.90호는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술로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감광성(感光性) 플라스틱 수지 용액["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을 포함한다. 이것은 폴리머, 감광제(感光劑), 비수용성 용매와 여러 가지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금속산화물이 도포된 실리콘 웨이퍼에 이용되는데, 이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재료 완성품으로 전환된다.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1) 인조 흑연(제3801호)
 - 2) 제3808호에 열거한 방식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 3)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 4) 주 제2호의 인증표준물질
 - 5) 주 제3호가목이나 다목의 물품
 - 나. 조제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 다. 제2404호의 물품
 - 라.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 주 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찌꺼기를 포함하며 하수 찌꺼기는 제외한다]
 - 마. 의약품(제3003호·제3004호)
 - 바. 비금속(卑金屬) 추출용이나 비금속(卑金屬) 화학혼합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촉매(제2620호),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이미 사용한 촉매(제7112호), 금속·금속합금으로 구성된 촉매(예: 미세하게 분리된 가루나 직조 거즈의 모양)(제14부나 제15부)
2. 가. 제3822호에서 “인증표준물질”이란 인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인증서가 첨부된 표준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 나.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인증표준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3. 제3824호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나. 퓨젤유(fusel oil)와 디펠유(dippel oil)
 - 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그 밖의 수정액·수정테이프(제9612호의 것은 제외한다)
 - 마.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예: 세겔콘(Seeger cone)]

제6부
제38류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건설 쓰레기와 해체 쓰레기를 말하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폐기물[예: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폐전지를 포함한다)]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 나. 산업용 폐기물
 - 다. 제30류의 주 제4호차목의 폐(廢)의료용품
 - 라. 주 제6호가목의 감염성 폐기물
5. 제3825호에서 “하수 찌꺼기”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前)처리된 폐기물·오물·안정화 되지 않은 찌꺼기를 포함한다(제31류의 비료로 사용되는 안정화된 찌꺼기는 제외한다).
6.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2710호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감염성 폐기물[의학연구, 검진, 치료, 그 밖의 내과·외과·치과·수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폐기물을 말하며, 병원균과 의약품질을 함유하므로 특수 처리과정이 필요한 것(예: 오염된 의류, 사용한 장갑·주사기)을 말한다]
 - 나. 폐(廢)유기용제
 - 다.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 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7. 제3826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알킬에스테르를 말한다.



소호주:

1. 소호 제3808.52호와 제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엘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프크릴(ISO), 캄페클로(ISO)(톡사핀), 캡타폴(ISO), 카보퓨란(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 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트리클로르폰(ISO).
2. 소호 제 3808.61 호부터 제 3808.69 호까지는 알파-사이퍼메트린(ISO), 벤디오카브(ISO), 비펜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사이플루트린(ISO), 델타메트린(INN, ISO), 에토펜프록스(INN), 페니트로티온(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말라티온(ISO), 피리미포스-메틸(ISO) 또는 프로폭수르(ISO)를 함유하는 제 3808 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제6부 제38류

3. 소호 제 3824.81 호부터 제 3824.89 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독사핀), 클로단(ISO), 클로르테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 술폰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 테트라·펜타·헥사·헵타·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짧은사슬 염화파라핀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은 염화 정도가 중량기준으로 48%를 초과하며 다음과 같은 분자식을 가진 혼합화합물이다. $C_xH_{(2x-y+2)}Cl_y$, ($x=10\sim 13$, $y=1.13$)

4. 소호 제 3825.41 호와 제 3825.49 호에서 “폐유기용제”는 주로 유기성 용제를 함유하지만 더 이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폐기물이다(용제(溶劑)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총설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과 그 관련 공업제품을 분류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보통 제28류나 제29류에 분류).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이 류에 분류한다.

- (1) 인조 흑연(제3801호)
- (2)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3808호에 규정한 모양으로 한 것)
- (3) 소화기용의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 (4) 산화마그네슘·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제3824호)(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5)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제3824호)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에는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주로 포함한다.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foodstuffs or other substances with nutritive value)”은 다음과 같은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예로서, 식품조제에 있어 미네랄 공급용에 사용하는 28류의 물품, 제2905호의 당알코올, 제2922호의 필수아미노산, 제2923호의 레시틴(lecithin),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제2940호의 당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제3002호의 동물 혈액 분획물, 제3501호의 카세인(casein)과 카세인산염(caseinates), 제3502호의 알부민(albumins), 제3503호의 식용 젤라틴, 제3504호의 식용 단백질계 물질, 제3505호의 덱스트린(dextrins)과 그 밖의 식용 변성 전분, 제3824호의 소르비톨(sorbitol), 제39류의 식용물품(예: 제3913호의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을 포함한다. 그 물품의 목록은 단순히 열거한 것이며, 총망라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히 함유한 혼합물은 주 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이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이나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나 물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제1호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

38.01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 인조 흑연

3801.2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3801.3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3801.90 - 기타

- (1) **인조 흑연**(전기흑연) : 탄소의 일종으로서 전기로에서 극히 미세하게 분쇄된 코크스(일반적으로 석유코크스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무연탄코크스 · 레토르트코크스 · 피치(pitch)코크스 등을 사용할 때가 있다)와 탄소질 응결제[예: 피치(pitch)나 타르(tar)]의 혼합물을 그 혼합물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촉매(예: 실리카나 산화철) 작용 하에 “흑연화(graphitisation)”가 확보되도록 충분한 고온(섭씨 2,500°C부터 3,200°C까지)으로 가열하여 만든다. 그 혼합물은 가압으로 횡단면이 사각이나 원형의 “녹색(green)” 블록으로 압출 성형되며, 이러한 블록은 섭씨 약 1,000°C에서 예열(구운 것)하여 흑연화하거나 흑연화 공정에 직접 제공된다.

이 방법에 의한 물품은 겉보기 비중(apparent specific gravity)이 약 1.5~1.6이며 X선 검사에 의하면 흑연의 균질한 미세결정구조를 나타낸다. 화학분석을 하면 그 물질이 흑연(흑연산의 침전)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보통 품질의 인조 흑연에 더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핵반응용 품질의 인조 흑연** : 특수하게 조제한 인조 흑연으로서 붕소의 함유량이 100만분의 1 이하이고 전체 열중성자 흡수극미횡단면이 원자 당 5밀리반(millibarn) 이하이다. 이 품질의 인조 흑연은 회분이 극히 적고(100만분의 20 이하) 원자로의 감속재(moderator)나 반사재(reflector)로서 사용한다.
- (b) **함침 인조 흑연이나 불침투성 인조 흑연** : 이것은 인조 흑연의 겉보기 비중을 배가시키거나 가스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째로 진공상태에서 타르 · 지방 · 설탕액 · 그 밖의 유기물품을 침투시키고 다시 열처리하여 이러한 첨가물의 탄소질 잔재물을 흑연화한 인조 흑연이다.

침투공정은 겉보기 비중(1.9 이상)을 높이거나 고도의 불침투성을 얻기 위하여 되풀이할 때가 있다. 또한 함침 흑연(impregnated graphite)은 핵반응 품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호의 인조 흑연은 보통 가루 · 플레이크(flake) · 블록 · 판 · 막대(stick) 등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인조 흑연의 블록과 판은 절단하여 고도의 기계처리로 완성가공(정밀완성과 적절한 표면처리)을 한 후에 제8545호에 열거된 브러시나 그 밖의 전기용 탄소제품이나 원자로의 부분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인조 흑연의 재생용에만 적합한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과 사용하여 낡은 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천연흑연(**제2504호**)

- (b)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가스 카본) : 때로는 “인조 흑연(artificial graphite)”이라고 잘못 부를 때가 있다(제2704호).
- (c) 표면가공·표면처리·특정 모양으로 절단·선반가공·드릴·밀 등의 가공이나 제품화한 인조 흑연 : 전기용이 아닌 종류의 것은 제6815호(예: 필터·원판·베어링·주형·내산(耐酸)벽돌 등)에 보통 분류하고 전기용 종류의 것은 제8545호에 분류한다.
- (d) 도자제품으로 소성한 내화물품 : 인조 흑연을 기본 재료로 한 것(제6902호나 제6903호)
- (e) 블록·판·막대(stick)과 이와 유사한 반제품(semi-manufacture)으로서 은의 가루를 함유한 인조 흑연 (제7106호)

(2) 콜로이드 흑연·반콜로이드흑연

- (a) 콜로이드흑연 :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의 미세한 입자를 물이나 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예: 알코올·광물유) 중에 소량의 탄닌(tannin)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물품을 현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시킨 경우도 있다. 콜로이드 흑연은 보통 반액체 상태이며 주로 윤활유 조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고전도성을 이용한다.
- (b) 반콜로이드흑연[즉, 물이나 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에 현탁된 반콜로이드상태 흑연] : 반콜로이드흑연은 흑연유 조제품이나 흑연표면 형성용에 사용한다.

이러한 범주에는 어떠한 매질(媒質)에 콜로이드나 반콜로이드 상태로 현탁된 흑연만을 분류하는데, 흑연이 그 주요 구성 성분이 된다.

(3)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semi-manufactures)으로 한정한다]

- (a) 금속 흑연질이나 그 밖의 품질의 “탄소(carbon)”블록, 판, 막대(stick),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반제품(semi-manufacture)

전기기기용 “탄소(carbon)”브러시 제조에 사용하는 블록·판 등의 반제품(semi-manufacture)을 분류하며, 탄소질(단일이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한 것)을 기본 재료로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i) 미세하게 분쇄한 코크스·유연(lamp black)·천연이나 인조 흑연의 가루를 피치(pitch)나 타르(tar)와 같은 탄소질점결제와 혼합하여 진정한 흑연화를 하는 데는 불충분한 온도(섭씨 1,000도부터 1,200도까지)로 태워서 얻어지는 “탄소(carbon)”
이와 같이 만든 물품의 구조는 불균일하고 ; 현미경으로 시험해 보면 무정형 탄소입자가 있는 흑연입자의 혼합물로 나타나며 화학분석으로는 흑연산의 침전상태가 인조 흑연에서 얻어진 것보다 약하다.
- (ii) 금속 흑연질로 조성된 것. 가루 흑연과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 가루(구리·카드뮴·그 합금)의 혼합물로부터 소결(응집·주조와 소성)하는 것과 유사한 공정에 의하여 얻어진다. 그 금속 함유량은 10%부터 95%까지이다.
- (iii) 플라스틱과 혼합한 천연이나 인조 흑연 가루를 성형하여 얻어지는 등급의 것

위에서 설명한 재료에서 얻어진 것 중 특히 블록과 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00mm×100mm×35mm·150mm×70mm×30mm이다. 이 물품은 절단하여 고도의 기계완성(정밀완성하거나 적절한 표면처리)을 한 다음 제8545호에 해당하는 전기용 브러시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한다.

앞에 규정한 인조 흑연의 반제품(semi-manufacture)은, 은 가루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 **제71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특별한 모양으로 절단된 것·표면가공·표면처리 등을 한 블록(일반적으로 **제6815호나 제8545호**)과 무정형 탄소나 천연흑연을 기본 재료로 한 도자제품과 같이 소성한 내화물품(**제6902호나 제6903호**)은 **제외한다**.

- (b)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 이 물품은 주로 무연탄과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접결제로서 작용)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작은 블록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금속제 용기의 상부에 삽입시켜 열을 받으면 연질(軟質 : soft)화되어 용기 내부에서 로(furnace)에 사용하는 엔드리스 전극(endless electrode)의 형태로 성형된다. 따라서 소모된 기성전극의 교환을 위해 더 이상 멈출 필요가 없다. 이 종류 중 가장 유명한 조제품은 “쇠텔베르크 페이스트(Soderberg paste)”이다.

유사한 페이스트(paste)는 노(furnace)의 내장용에 사용하며 원위치(in situ)에서 경화된다.

또한 이 범주에는 **페이스트 상태의 흑연**을 분류하는데, 이는 광물유(mineral oil)를 가지고 있는 입자 상태의 흑연 혼합물[대부분 5마이크로미터(미크론)를 초과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기(重機)의 표면처리용이나 흑연 그리스(grease)의 제조용에 다 같이 적합하다.

38.02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 - 활성탄

3802.90 - 기타

(A) 활성탄 ;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탄소와 광물성 물질은 그 자체를 탈색·가스·습기의 흡착·축매·이온교환·여과와 같은 어떤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처리(가열·화학품 등)를 함으로써 그 표면구조가 변형되는 경우에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두 개 그룹이 해당된다.

(I) 일반적으로 매우 큰 비표면적(specific surface)(100m²/g)과 반 데르 발스결합(van der Waal's bond)(물리적 흡착)·유기·무기분자로 포화할 수 있는 유리의 화학결합(화학적 흡착)으로써 특성화된 물품

이러한 물품은 특정 식물성이나 광물성 물질(점토·보크사이트 등)을 천연의 불순물이 있는 상태로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화학적 처리하거나 가열처리하여 만든다. 이 처리는 기초 물질의 구조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비표면적의 증가·결정성 물질의 경우에는 원자가 서로 다른 원자의 삽입이나 치환으로 결정격자에 변이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유리상태(遊離狀態: free state)로 남은 원자가는 표면에 양자(proton)나 전자(electron)의 축합을 야기하여, 물품을 화학적 흡착제·축매·이온교환체로서 활성화시킨다.

(II) 일반적으로 극히 적은 비표면적(1~100 m²/g 정도)을 가진 물품.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높은 전하밀도(electrical charge density)를 가지고 있으나 뚜렷한 흡착능력이 없기 때문에 탈색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물속에 현탁된 상태 하에서는 콜로이드(colloid)와 강력한 정전적 상호작용을 발휘하여 그 응고를 용이하게 하거나 저지하며 따라서 여과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이와 같은 형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적당히 가열처리하여 만들기도 한다. 하소(煨燒) 공정 중 알칼리물질의 존재는 표면전하의 생성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활성탄(activated carbon)** : 이것은 보통, 식물성·광물성·그 밖의 탄소(목탄·야자각탄·이탄·아탄·석탄·무연탄 등)를 고온에서 증기·탄산가스·그 밖의 가스의 존재 하에 처리하거나(가스 활성화 처리) 특정 화학품의 용액을 침투시킨 섬유소재료를 건조 하소(煨燒)하여(화학적 활성화 처리) 만든다.

활성탄은 미세한 가루로 많은 공업부문(설탕이나 포도당의 제조·기름·양조공업·의약품 등)에서 액체 탈색제로 사용한다. 알갱이 모양의 것은 증기의 흡착[예: 드라이클리닝 공정 중 휘발성 용제(溶劑: solvent)의 회수·석탄 가스에서 벤젠을 제거 등]·물이나 공기의 청정·유독 가스로부터 보호·촉매·전기분해시 전극에 가스의 축적을 배제(감극)하는데 사용한다.

(b) 그 밖의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 (1) **활성규조토** : 키질구어(kieselguhr)나 그 밖의 정선된 규조토를 필요에 따라 산으로 석탄질을 제거하고 염화나트륨·탄산나트륨과 같은 소결제(sintering agent)를 첨가하여 하소(煨燒)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분쇄와 유별한 것이다. 소결제(sintering agent) 첨가 없이 하소(煨燒)한 규조토는 **제외한다(제2512호)**.
- (2) **특정의 화산광물** : 진주암(眞珠巖)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분쇄한 후에 매우 뜨거운 불꽃(섭씨 1,000°C 이상)으로 열“충격(shock)”을 가하고 다시 분쇄하여 유별된 것. 활성화 된 진주암(眞珠巖)은 극히 가볍고 광택이 나는 가루 상태이다. 현미경으로 검사해 보면 곡면이 있는 아주 얇은 투명 플레이크(flake)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1)·(2)에서 열거한 두 가지 유형의 물품은 외관상 비중이 극히 낮고 화학품이나 의약품(특히 항생물질)의 제조·설탕·포도당공업·음료제조공정에서, 물 등의 여과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여과 매질(媒質)이다.
- (3) **활성점토와 활성토류** : 이것은 정선된 콜로이드(colloid) 모양의 점토나 점토질이 많은 토류를 그 용도에 따라 산이나 알칼리로 활성화하고 건조시켜 분쇄한 것이다. 알칼리로 활성화하면 유화제·현탁제와 응고제가 되며 특히 광택제와 청정제의 제조용에 사용하고 또 그 팽창성 때문에 주물용 사(沙)·드릴링 슬러지(drilling sludge)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한다. 산(酸)으로 활성화한 것은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의 기름·종이·왁스의 탈색용에 사용한다.
- (4) **활성 보크사이트** : 보크사이트(bauxite)는 보통 알칼리(alkali)나 적당한 열처리로서 활성화되며 주로 촉매·건조제·탈색제로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표면구조를 변형시키는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천연의 활성광물성 생산품(예: 표포토)(제25류)
- (b) 활성화한 화학약품. 예: 활성 알루미늄(제2818호)·활성 실리카겔(제2811호나 제3824호)·인조불석 이온교환체(제2842호, 결합제를 함유한 것은 제3824호)·술폰화콜(sulphonated coal) 이온교환체(제3824호)
- (c) 의약품의 성격을 가진 활성탄(제3003호나 제3004호)이나 냉장고·차 등의 탈취제로서 소매 포장한 활성탄(제3307호)
- (d) 화학품(예: 금속산화물)을 활성 재료(예: 활성탄이나 활성 규조토)의 지지물 위에 고정시켜 조성한 촉매(제3815호)
- (e) 경량(輕量)·회전 다원체의 알갱이 모양의 팽창 펄라이트(perlite)[진주암(眞珠巖)](제6806호)

(B) 수탄(獸炭 : animal black)[폐수탄(廢獸炭 : spent animal black)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동물성 재료를 탄화하여 얻어진 여러 가지 탄화물을 분류하며, 특히 다음의 물품이 있다.

(1) **골탄(bone black)** : 탈지된 뼈를 밀폐용기 속에서 소성하여 얻는다. 다공질(多孔質)의 흑색제품으로서 순수한 탄소의 함유량이 매우 작다[산(酸)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탄소의 중량이 약 10%부터 20%까지 이며 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탄소함유량이 이보다 크다]. 골탄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페이스트(paste) 모양이며 또한 골 모양으로 된 조각이나 골탄 제조에 사용하였던 뼈 조각 그대로 된 것도 있다. 골탄은 많은 공업부문(특히 제당공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탈색제이며 흑색안료로서 예를 들어 광택제와 특정 잉크제조에 사용한다.

폐 골탄(spent bone black)은 비료로 사용하며 또한 흑색 안료의 제조용에도 쓰인다.

(2) **혈탄(blood black)** : 이것은 건혈(dried blood)을 밀폐용기에서 소성하여 얻으며 일반적으로 탈색제(decolourising agent)로서 사용한다.

(3) **아이보리블랙(ivory black)** : 이것은 아이보리 웨이스트(waste)를 소성(燒成)하여 얻는다. 이 물품은 보통 극히 미세하며 벨벳과 같은 촉감 있는 흑색 가루나 불규칙한 형태로 된 작은 원추 모양으로서 화가용 회구에 사용한다.

[“아이보리 블랙(ivory black)”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골탄의 특급품을 말할 때 사용한다]

(4) **가죽 블랙·뿔 블랙·발굽 블랙·귀갑 블랙(tortoise-shell black) 등**

38.03 -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톨유(tall oil)[액체 상태 로진(rosin)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다]은 알칼리법이나 보다 특별하게는 황산법으로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긴 흑색 폐액(廢液)에서 얻어진다. 폐액(廢液 : residual liquor)을 침전통에 쏟을 때 그 표면에 거품덩어리의 물질이 형성된다. 조톨유(crude tall oil)은 이 거품덩어리를 가열하고 또 보통 묽은 황산으로 산성화할 때 얻는다.

조톨유는 지방산(주로 올레산·리놀레산과 그 이성체)·수지산(특히 아비에트산)·소량의 불감화물(스테롤·고급 알코올과 여러 가지 불순물)의 암갈색인 반액체 상태의 혼합물로서 목재의 질에 따라 혼합 비율은 다양하다.

정제톨유(refined tall oil)는 매우 낮은 압력 하에서 조톨유(crude tall oil)를 증류하거나[증류톨유(distilled tall oil)] 그 밖의 공정(예: 선택적 용제나 활성토로 처리)으로 얻어지며 주로 지방산과 수지산으로 조성된 담황색 액체이다.

톨유(tall oil)는 특히 도로 포장용 유제·섬유·제지공업에서의 보통비누·금속비누·습윤제와 유화제·바니시(vernish)·페인트·리놀륨제조용 건성유·금속가공용 오일·소독제·매스틱(mastic)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고무의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톨유(tall oil)지방산·톨유(tall oil)수지산의 원료로서도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증류톨유(distilled tall oil)를 알칼리(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를 사용하여 중화해서 만든 검화톨유(saponified tall oil)(**제3401호**)
- (b) 소다법이나 황산법에 의한 목재펄프의 제조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침전통에 있는 이 폐액(廢液)에서 분리 제거된 거품덩어리(**제3804호**)
- (c) 주로 톨유(tall oil)의 지방산에서 분리 제거한 수지산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톨유(tall oil) 수지산(**제3806호**)
- (d) 톨유(tall oil) 증류 잔재물인 황산 피치(pitch)[톨유 피치(tall oil pitch)](**제3807호**)
- (e) 지방산을 전 중량의 90% 이상 함유한(건조 중량에 의해 계산한 것) 톨유(tall oil)지방산으로서, 톨유(tall oil)에서 진공 분별 증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지산의 대부분을 분리 제거한 것(**제3823호**)

38.04 -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아황산법에 의한 목재 펄프(pulp)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하거나 당류를 제거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아황산펄프 폐액(廢液)의 농축물은 주로 리그노술폰산의 염과 당류·그 밖의 물품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점성의 액체·끈적끈적한 갈색 페이스트(paste)·유리질의 갈라진 틈이 있는 거무스름한 덩어리[이 경우에는 아황산 피치(pitch)나 셀룰로오스 피치(pitch)로 알려지고 있다]나 건조한 가루 모양이다.

아황산펄프 폐액(廢液)의 농축물은 연료압착 블록이나 주물용 코어(core)의 중성자결합제로서나 글루(glue)·침투제·살균제·유연제(tannin)의 조제·알코올 제조 등에 사용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리그닌 술폰산염(lignin sulphonates)**을 포함하는데, 이는 보통 아황산 펄프 폐액(廢液)으로부터 침전법에 의하여 얻는다. 리그닌 술폰산염은 접착제 구성요소·분산제·콘크리트(concrete) 혼합제나 드릴링머드(drilling-mud) 첨가제로 사용한다.

- (2) **목재 펄프를 소다법(soda process)이나 황산법으로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 residual lye)** [농축하거나 당류를 제거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침전통에서 폐액(廢液)표면에 생성된 거품덩어리를 포함한다]. 이 폐액(廢液)은 보통 흑색이고 톨유(tall oil)의 원료이며 수산화나트륨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수산화나트륨(제2815호)
- (b) 톨유(tall oil)(제3803호)
- (c) 황산 피치(pitch)[톨유 피치(tall oil pitch)](제3807호)

38.05 -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 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 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유

3805.90 - 기타

이 호에는 주로 침엽수의 침출물이나 수지질에서 얻어지는 테레빈(turpentine)(피넨 · 베타피넨 · 리모넨 등)이 풍부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휘발성 물품** : 소나무나 그 밖의 침엽수(전나무 · 낙엽송)에서 침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테레빈(turpentine)]을 증류(보통 수증기 증류에 의한다)한 것이다. 이러한 물품을 어떤 나라에서는 “검테레빈유(gum spirits of turpentine)”라 하고 있으나, 한편 “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라는 품명은 특정의 끓는 점과 밀도 내에 있는 휘발성 물품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 소나무(生松)에서 침출한 신선한 올레오레진(oleoresin)을 증류하여 만든다.

이 물품은 모두 유동성 · 무색 액체 · 불수용성 · 고도의 굴절성이 있으며 침투성이 강한 냄새가 있다. 용제(溶劑 : solvent) · 특히 바니시(vernish) · 페인트와 광택제의 제조나 의약품의 조제 · 합성 장뇌 · 수화 테르펜 · 테르피네올 제조 등에 사용한다.

- (2) **우드테레빈 · 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테르펜계유** : 침엽수를 증류나 그 밖의 처리를 하여 만든 것이다.

(a)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은 소나무 그루터기나 그 밖의 수지분이 많은 부분을 수증기증류나 분해증류(건류)하여 만든 가장 휘발성이 높은 물품이다.

(b) 황산테레빈(*Sulphate turpentine*)은 황산법으로 수지분이 많은 나무에서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얻는 휘발성 테르펜 부산물이다.

본 항에 열거된 물품은 테르펜(terpene)이 풍부한 액체이며 침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에서 나온 테레빈유와 용도가 동일하며 특히 바니시(vernish) · 페인트 등의 조제시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 (3) **가공하지 않은 디펜텐(crude dipentene)** :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을 분류나 합성 장뇌(camphor) 제조의 부산물로서 얻어진 테르펜계유(terpenic oil)이다[디펜텐(dipentene)의 함유량이 80% 이하의 것]. 순수한 디펜텐이나 상거래 관습상의 순수한 디펜텐은 **제2902**호에 분류한다.

- (4) **아황산 테레빈(sulphite turpentine)** : 아황산방법으로 목재 펄프를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얻어진 휘발성 황색 액체이다. 소량의 테르펜(terpene)과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para-cymene)이다. 또한 이 호에는 이들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crude *p*-cymene)도 분류한다.

- (5) **파인유(pine oil)** : 일반적으로 소나무의 기름성의 그루터기를 수증기 증류나 분해 증류(건류)로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을 채취한 후에 얻은 분획물이다. 또한 이것은 화학적 합성(예: 알파피넨의 화학적 수화작용)에 의해서도 얻는다. 이 호에는 오직 주요 성분으로서 알파테레피네올(α -terpineol)을 함유하고 있는 파인유(pine oil)만을 분류한다. 파인유(pine oil)는 무색이나 호박색의 액체이며, 알파테레피네올이 풍부하고 주로 섬유공업용 습윤제·바니시(vernish)와 페인트 제조용 용제(溶劑 : solvent)·소독제·부선(flotation)으로 금속광을 농축하는데(부유선광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순수하거나 상거래 관습상의 순수한 테르펜 탄화수소(terpenic hydrocarbon)·테르펜(terpene)·테레피네올(terpineol)과 수화 테르핀(terpin hydrate)(**제29류**)
- (b) **제3301호**에 열거된 정유(essential oil)의 일종인 송엽유(pine needle oil)
- (c) 로진(rosin)유(**제3806호**)

38.06 - 로진(rosin) · 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 - 로진(rosin)과 수지산

3806.20 -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 ·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3806.30 - 에스테르 검(ester gum)

3806.90 - 기타

(A) 로진(rosin)과 수지산(resin acid)

로진(rosin)과 수지산(resin acid) : 모두 소량의 비산성(非酸性) 물질을 함유하는 아비에트산(abietic acid)과 연관된 산(allied acid)의 복합혼합물로 주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투명한 유리질의 고체이다. 색상은 불순물이 존재하는 양에 따라 옅은 황색부터 암갈색까지 다양하다.

로진과 수지산은 다음의 공정에 의해서 얻어진다.

- (1) 소나무나 그 밖의 침엽수[송지(pine resin) · 갈리팟(galipot) · 바라스수지(barras resin) 등]로부터 침출물의 형태로 얻어진 올레오(oleo)수지물질을 증류한 휘발성 테르펜계산품[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와 이와 유사한 테르펜계용제]을 분리
- (2) 소나무 그루터기 부분으로부터 용제(溶劑 : solvent) 추출
- (3) 톨유(tall oil)의 분획증류물 · 펄프와 제지공업의 부산물

로진(rosin)과 수지산 : 특정 비누제조 · 종이의 사이징(sizing) · 바니시(vernish) · 광택제 · 매스틱(mastic) · 잉크 · 실링왁스(sealing-wax) 제조 · 주물용 코어 점결제 · 브루어피치(brewers' pitch) 등의 조제, (B)와 (D)에 열거한 로진(rosin) 유도체와 로진유(rosin oil)의 제조 원료로서 사용한다.

**(B) 로진염 · 수지산염이나
로진 ·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이 그룹의 염에는 로진(rosin)의 염 · 수지산염 · 로진이나 수지산의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수지산 나트륨이나 수지산 칼륨은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 용액에서 가루 로진(powdered rosin)을 끓여서 만든다. 그 밖의 무기 수지산염은 일반적으로 금속염의 용액으로 수지산 나트륨이나 수지산 칼륨을 침전하여 만들거나[침전 수지산염(precipitated resinates)] 로진(rosin)이나 수지산과 금속산화물의 혼합물[용융 수지산염(fused resinates)]을 용융하여 만든다. 이러한 물품의 예로는 알루미늄 · 칼슘 · 코발트 · 구리 · 망간 · 납과 아연의 수지산염이 있다.

수지산염은 바니시(vernish)나 페인트 제조용 기름의 조성을 배가시키는데 사용하며 또한 살균제 · 소독제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경화 로진(hardened rosin)도 이 그룹에 포함한다. 경화 로진은, 예를 들어 수산화칼슘(약 6%의 비율)으로 로진이나 수지산을 처리하여 얻으며 이를 경화하여 바니시(vernish) 제조용에 더욱 적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귀금속의 수지산염(제2843호)과 제2844호부터 제2846호까지에 열거된 수지산염
- (b) 수지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드라이어(제3211호)
- (c) 고급 지방산과 로진·수지산의 혼합물을 검화(비누화)하여 얻어진 수지비누(resin soap)(제3401호)와 수지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 세제(제3402호)

(C) 에스테르 검(ester gum)

이는 로진이나 수지산·이들의 산화·수소화·불균형화(탈수소화)·중합유도체에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글리세롤(glycerol)·그 밖의 다가 알코올로 에스테르화(esterified) 하여 얻어진다. 이들 에스테르 검(ester gum)은 천연 수지보다 가소성이 좋은데(more plastic), 이 특성으로 안료와 그 밖의 재료의 혼합에 적합하다.

(D) 기 타

(I) 로진과 수지산의 유도체

- (1) 산화로진(oxidised rosin)과 산화수지산(oxidised resin acid) : 보통 오랫동안 땅에 방치됨으로 인해 수지산 함유량이 자연 산화된 침엽수의 그루터기의 추출물(extract)을 증류하여 생긴 잔재물로서 얻어진다. 로진과 수지산은 인공적으로 산화시킬 수도 있다. 산화로진과 산화수지산은 글루(glue) 유제·바니시(vernish)·페인트·잉크의 제조와 전기절연 등에 사용한다.
- (2) 수소화로진(hydrogenated rosin)과 수소화 수지산(hydrogenated resin acid) : 촉매 하에서 수소로 로진과 수지산을 처리하여 얻어진다. 이들은 보통 로진과 수지산보다 산화에 대한 저항성이 크며, 빛에 쉽게 변색하지 않는다. 이들은 바니시·비누 등 제조에 사용한다.
- (3) 불균화(탈수소)로진[disproportionated(dehydrogenated) rosin]과 불균화 수지산(disproportionated resin acid) : 예를 들면, 로진과 수지산을 적당한 온도나 산(酸)촉매(황과 셀렌도 실용적인 촉매이다)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열처리해서 제조된다. 이들은 바니시 등 제조에 사용한다.
- (4) 중합 로진(polymerised rosin)과 중합 수지산(polymerised resin acid) : 로진과 수지산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며, 특히 높은 점도와 안정이 있는 바니시의 제조에 사용한다. 중합도(重合度 : degree of polymerization)는 매우 낮다. 중합 로진과 수지산은 보통 다이머(dimer)와 불중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머화 로진(dimerised rosin)으로도 불리어지기도 한다.

- (5) **로진이나 수지산의 모노수소알코올에스테르(monohydric alcohol ester)**. 여기에 분류하는 에스테르(ester)에는 “레지네이트(resinate)”나 “아비에테이트(abietate)”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다[예: 메틸(methyl)·에틸(ethyl)과 벤질에스테르(benzyl ester)·“메틸 히드로 아비에테이트(methyl hydroabietate)”. 이것들은 특히 셀룰로오스라커(cellulose lacquer)의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로 사용한다.
- (6) **이수소 아비에틸(dihydroabietyl)·사수소 아비에틸(tetrahydroabietyl)·탈수소 아비에틸(dehydroabietyl) 알코올의 혼합물(“abietyl alcohol”)**
- (7) **로진 부가물과 이들의 유도체** : 이들은 푸말산(fumaric acid)·말레산(maleic acid)이나 이들의 무수물(無水物)과 변성된 로진이나 수지산으로서 알키드레진(alkyd resin)·로진사이징(rosin size)과 잉크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부가물은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글리세롤(glycerol)·그 밖의 다수소(polyhydric) 알코올을 에스테르화(esterified)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 그룹에는 로진(rosin) 부가물의 염[예: 말레산로진 부가물의 염(salts of rosin-maleic adduct)이나 푸말산로진 부가물의 염(salts of rosin-fumaric adduct)]도 포함한다.

(II)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오일(rosin oil)

이 물품은 보통 로진(rosin)이나 수지산(resin acid)을 과열수 증기와 축매로 증류하거나 분해증류(分解蒸溜 : destructive distillation)하여 얻는다. 이들 주요 성분은 산화수소의 복합혼합물이며 증류 상태에 따라서 유기산(organic acid)을 다소 함유하고 있다.

- (1) **로진 스피릿(rosin spirit)** : 가장 휘발성이 강한 분획물로서 유동성이 있고 자극성 냄새가 있는 담황색 액체이며, 수지용 용제(溶劑 : solvent)·바니시·페인트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로진오일(rosin oil)** : 다소 점착성이 있고, 색상과 품질이 다양하며(금색 기름·백색 기름·녹색 기름·갈색 기름) 연기와 같은 냄새가 있다. 주로 윤활유·절삭유·인쇄잉크·연고·바니시·페인트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술폰화 로진오일(rosin oil)(제3402호)
- (b) 살아있는 소나무나 그 밖의 살아있는 침엽수로부터 뽑아낸 올레오레진(oleoresin) 침출물을 증류해서 얻은 휘발성 성분(제3805호)
- (c) 로진피치(rosin pitch)(제3807호)

(III) 런검(run gum)

런검(run gum)은 열대지방 수목의 올레오레진(oleoresin) 침출액으로부터 “검러닝(gum running)”이라는 공정을 통해 얻는다. 그 공정에서는 침출액을 열처리하여 건성유(drying oil)에 용해되도록 한다. 런검의 가장 보통 원천은 코펠(copal)이다.

38.07 -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수지질이나 비수지질 나무를 증류나 탄화할 때 얻어지는 복합 성분의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으로 가스는 별도로 목초액(pyroligneous liquid)·목(木)타르(wood tar)와 목탄(wood charcoal)을 얻게 되며 그 비율은 사용한 나무의 질과 조작 속도에 따라서 변한다. 목초액[조(raw)목초산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다]은 국제무역상품은 아니지만 초산(acetic acid)·메탄올(methanol)·아세톤(acetone)·소량의 푸르푸르알데히드(furfuraldehyde)와 알릴알코올(allyl alcohol)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의 식물성 피치(pitch)·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로진(rosin)·수지산(resin acid)이나 식물성 피치를 기본 재료로 한 유사화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A) 목(木)타르(wood tar), 목(木)타르유(wood tar oil)[탈크레오소트(decreosote)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와 목(木)크레오소트(wood creosote)

- (1) **목(木)타르(wood tar)** : 나무(침엽수나 그 밖의 것) 숯가마에서 탄화시키는 동안 서서히 흘러내리거나[예: 스웨디쉬 타르(Swedish tar)나 스톡홀름 타르(Stockholm tar)] 증류기나 가마에서 증류하여[증류타르(tar)] 얻는다. 후자는 목초액으로부터 침전분획물로서 직접 얻거나(침전타르) 우드타르분이 부분적으로 용해되어 있는 목초액을 증류하여 얻는다(용해타르).

일부 휘발성 유분이 증류 제거된 부분증류 타르(tar)도 이 호에서 분류한다.

이러한 타르(tar) 류는 모든 탄화수소·페놀(phenol)이나 그 동족계열(同族列: homologous series)·푸르푸르알데히드·초산(acetic acid)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물품의 복합혼합물이다.

수지질 나무에서 얻어진 타르(tar)는 비수지질 나무에서 얻어진 타르와 달라서 수지의 증류에서 생기는 물품[테르펜(terpene)·로진오일(rosin oil) 등]을 함유하며, 갈색을 띤 오렌지색부터 갈색까지의 점성 물질이다. 주로(단순한 탈수나 부분증류 후에 얻어지는 것과 같은 것) 선용 케이블의 침투용·고무공업의 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매스틱(mastic)의 조제·의약품 등에 사용한다.

비수지질 나무에서 얻어진 타르(tar)는 흑갈색의 진한 액체로서 이것을 증류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광범위한 부산물[목(木)크레오소트(wood creosote)·구아이아콜(guaiacol) 등] 조제에 주로 사용한다.

케이드유(cade oil)는 주니퍼 타르유(juniper tar oil)라고 알려져 있으며 의약품과 비누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 (2) **목(木)타르유(wood tar oil)** : 목(木)타르(wood tar)의 증류 산물이다. 경질유(light oil)(지방족 탄화수소·테르핀·고급케톤을 함유)는 양의 세척용(sheep dip)과 원예용 분무액의 제조에 사용하며 중질유[지방족과 방향족(芳香族)탄화수소·고급 케톤(ketone)과 고급 페놀(phenol)을 함유]는 목재의 침투·목(木)크레오소트(wood creosote) 추출에 사용한다.

탈크레오소트유(decreosote oil)는 크레오소트(creosote)의 추출 후에 얻어지며 그 성질에 따라 부유선광·살균제·용제(溶劑: solvent)·연료 등에 사용한다.

(3) **우드크레오소트(wood creosote)** : 목(木)타르(wood tar)의 주성분이다. 보통 비수 지질 목재에서 얻어진 타르(tar)를 증류하고 적절한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분리하고 다시 산성화하고 재증류해서 얻는다. 무색의 액체이지만 공기와 광선의 작용으로 착색되고 연기같은 냄새가 있으며 부식성이 있고 특히 살균제·방부제로서 사용한다. 제2707호에서 분류하는 크레오소트오일(creosote oil)이나 광물성 크레오소트(mineral creosote)와는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B) **우드나프타(wood naphtha)** : 목초액을 처리하여 얻는다. 탄 냄새가 있는 담황색 액체로서 보통 70~90%의 메탄올(methanol)에 여러 가지 비율의 아세톤과 그 밖의 케톤(ketone)(일반적으로 8~20%)·그 밖의 불순물[메틸아세테이트(methyl acetate)·고급알코올·타르물질 등]과 함께 함유되어 있다. 특정 종류의 우드나프타(wood naphtha)는 에탄올(ethanol)의 변성제로 사용한다.

(C) **식물성 피치(vegetable pitch)**

이것은 식물성 재료를 증류하거나 그 밖의 처리에서 생긴 잔재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목(木)피치(wood pitch)[목(木)타르 피치(wood tar pitch)]** : 목(木)타르(wood tar)의 증류잔재물이다.

(2) **로진피치(rosin pitch)** : 로진을 증류하여 로진 스플릿(rosin split)과 로진 오일(rosin oil)을 제조할 때의 잔재물이다.

(3) **황산 피치(sulphate pitch)** : 톨유(tall oil) 등을 증류한 후의 잔재물이다.

이러한 피치(pitch)류는 보통 흑갈색·적갈색·황갈색이며 일반적으로 손의 열로 연화(soften)된다. 종류에 따라서 선박 코킹(caulking)제·직물의 방수피복제·목재의 침투제·방청피복제·물품의 결합제 등에 사용한다.

(D)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1) **브루어피치(brewers' pitch)** : 가열하여 맥주 통 피복에 사용한다. 대개 로진·파라핀 왁스(paraffin wax)와 로진유(rosin oil)의 혼합물이나 로진과 식물성유(아마인유·면실유·채종유)의 혼합물을 용해하여 얻는다.

(2) **코블러 왁스(cobblers' wax)** : 신발·마구(馬具 : harness)를 꿰매는 실에 왁스를 칠하는데 사용하며 보통 로진·로진오일·파라핀왁스·오우조커라이트 등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고 가루의 무기질(활석이나 고령토)을 함유하고 있다. 보통 블록 모양·막대(stick) 모양·원반 모양이다.

(3) **코킹용 피치(caulking pitch)** : 선박 코킹(caulking)제에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목(木)피치·목(木)타르와 로진의 혼합물을 용해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

(a) 천연의 부르군디 피치(Burgundy pitch)(“보스그스피치(Vosges pitch)”라고도 알려져 있다)(특정 침엽수에서 얻어진 천연 수지)와 옐로우 피치(yellow pitch)(용해하고 여과하여 정제한 천연의 부르군디 피치) **(제1301호)**

(b) 스테아린 피치(stearic pitch)·울 그리스 피치(wool grease pitch)·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제1522호)**

(c) 석탄·토탄·석유 등에서 얻어지는 광물성 피치(pitch) **(제27류)**

제6부
38.07

- (d) 순수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메탄올(메틸알코올), 목재 증류의 일차 산품을 재처리하거나 재증류하여 얻어진 화학적으로 단일인 물질[예: 초산(acetic acid)·아세톤·구아이아콜(guaiacol)·포름알데히드·초산염(acetate) 등](제29류)
- (e) 실링 왁스(sealing wax)(제3214호나 제3404호)
- (f) 목재 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 residual lye)(제3804호)
- (g) “브라이스 레지노스(Brais résineux)”(제3806호)

38.08 -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물품

3808.52 --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3808.59 -- 기타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물품

3808.61 -- 순 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808.62 -- 순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7.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808.69 -- 기타

- 기타

3808.91 -- 살충제

3808.92 -- 살진균제

3808.93 --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3808.94 -- 소독제

3808.99 -- 기타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중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살충제·소독제·제초제·살균제 등은 분무·산분(dusting)·살포·도포·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물품들은 신경의 독·위의 독·질식·냄새 등으로 그 효과를 나타낸다.

이 호에는 또한 식물의 생리기능의 억제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발아억제제나 식물성장조절제를 포함하며, 이들의 용도는 다양하고 이들의 효과는 식물의 구제와 성장력의 촉진과 수확의 개량에 이른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1)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판지로 만든 카톤(carton) 등]이나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모양의 것[예: 구(ball)·구(ball)로 된 끈·정제(tablet)·플레이트(plate)]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모양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 혼합물이 아닌 물품은 주로 화학적으로 단일인 물품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제29류에 별도로 분류한다(예: 나프탈렌이나 1, 4-디클로로벤젠).

이 호에는 소독제·살균제 등으로 소매하기 위해 조합한 다음의 물품도 분류한다.

- (a) **유기계면활성제와 조제품** : 방부성·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 양이온(active cation) (예: 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것이다.
- (b) **폴리(비닐 피롤리돈)-요드[poly(vinyl pyrrolidone)-iodine]** : 이는 요드와 폴리(비닐 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과의 반응물이다.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에는 상관없다(예: 액체 상태·결속한 액체 상태·가루).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active)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액체 속에 현탁(懸濁)·분산(分散)되어 있거나[예: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을 물에 분산한 것] 그 밖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활성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溶劑: solvent)**에 녹인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예: 제충국(除蟲菊: pyrethrum)추출물(extract)(농도를 표준화한 제충국(除蟲菊: pyrethrum)추출물(extract)은 제외한다)의 용액 또는 나프텐산구리를 광유(mineral oil)에 녹인 용액].

소독제·살균제·살충제 등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합성을 필요로 하는 중간 조제품은 이들이 이미 소독제·살균제 등의 특성을 갖는 가공을 거친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소독제·살충제 등의 조제품은 구리 화합물(초산구리·황산구리·아세트아비산구리 등)·황·황화합물(황산칼슘·이황화탄소 등)·광물성 크레오소트(creosote)·안트라센유·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린덴(ISO·INN)·파라티온·페놀(phenol)·크레졸 유도체·비소함유물(비소칼슘·비산납 등)·식물성 재료[니코틴·담배 에센스·담배 가루·로테논(rotenone)·제충국(除蟲菊: pyrethrum)·적해충(red squill)·채종유(rape oil)]·성장 조절제(천연이나 합성의 것)(예: 2, 4-D)·바이러스와 미생물의 배양체 등을 기본 재료로 한다.

식품(밀·밀기울·당밀 등)에 독약을 혼합하여 조성한 독성먹이(poisoned bait)는 이 호에 포함되는 조제품의 또 다른 예이다.

(3)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공장용 큰 통·주거지 등의 소독과 훈증용)·파리잡이 끈 끈이[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글루(glue)를 도포한 것을 포함한다]·과수용 그리스 밴드(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잽 저장용지로서 살리실산을 침투시킨 것·린데인(lindane)(ISO, INN)을 도포한 작은 목재 토막 막대(stick)와 태워서 사용하는 물품 등과 같은 모양의 **물품**으로 포장한 것

*
* *

제3808호의 물품을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 살충제(insecticide)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방충효과나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스프레이·블록 모양(나방용), 오일·점착물 상태(모기용), 가루 상태(개미용), 스트립(strip) 상태(파리용), 구조암·판지 등에 흡수시킨 시아노겐가스(cyanogen gas) [벼룩(fleas)용과 이(lice)용]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살충제는 이들의 작용법이나 사용법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해충성장억제제 : 해충의 생화학적, 생리적 과정을 간섭하는 화공약품
- 훈증제 : 가스로서 공기 중에 살포되는 화공약품

- 화학 불임제 : 해충 집단의 마디를 불임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화공약품
- 방충제 : 해충의 음식물이나 생활 환경을 구미가 당기지 않게 하거나 고약하게 해서 해충의 접근을 막는 물질
- 유인제 : 텃이나 독성을 가진 먹이에 해충이 모이도록 하는 것

(II) 살진균제(fungicide)

살진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질(예: 구리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본 재료로 한 물질)도 있다. 살진균제는 이들의 작용법이나 사용법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것은 예는 다음과 같다.

침투성 살진균제 - 이들 화학물질들은 사용된 자리에서 다른 식물부분까지 수액흐름으로 이용된다.

훈증제 - 세균에 영향을 받은 물품에 가스형태로 사용해서 균류를 없애는 화공약품이다.

(III)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나 말살을 위해 사용하는 화공약품이다. 어떤 제초제는 휴면 중인 식물 부분이나 종자에 사용하는 반면에, 다른 제초제는 완전한 나뭇잎(foliage)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선별적(selective)**(특정 식물에만 영향을 주는 제초제)이나 **무차별적(non-selective)**(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초제)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낙엽제(defoliant)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식물의 잎을 성숙하기 전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화공약품이다.

발아억제제(anti-sprouting product) : 종자 · 인경(鱗莖 : bulbs) · 괴경(塊莖 : tubers) · 토양에 발아를 억제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식물성장조절제(plant growth regulator) : 식물성장의 촉진 · 지연 · 수확의 증대 · 질(質)의 개선 · 수확의 용이성 등을 위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한다. 식물 호르몬[파이토호르몬(phytohormone)]은 식물성장조절제의 한 형태이다[예: 지베렐릭산(gibberellic acid)]. 합성 유기화학약품도 식물성장조절제로 사용한다.

(IV) 소독제(disinfectant)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 · 바이러스 · 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 · 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응애(mite)와 진드기(tick)[살비제(殺蟬濟 : acaricide)]·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선충(선충박멸제)·설치류(쥐약)·조류(조류 박멸제)와 그 밖의 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lampreycide)·프레다 박멸제(predacide)]을 억제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위에서 설명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소독용·살균용 등의 물품, 이들 물품은 이들 성질에 따라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분쇄한 제충국(除蟲菊 : pyrethrum) 꽃(제1211호)
 - (ii) 제충국(除蟲菊) 추출물(extract)(광물유를 첨가하여 표준화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1302호)
 - (iii) 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 광물성 크레오소트(creosote)(제2707호)
 - (iv) 나프탈렌·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와 그 밖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수용액을 포함한다)(제28류나 제29류)
 - (v) 쥐약(rodenticide) 등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미생물배양제(제3002호)
 - (vi) 폐산화물(spent oxide)(제3825호)
- (b) 이 표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보조적인 소독성·살균성 등을 가지고 있는 조제품 예:
 - (i) 선체용 오손방지 페인트로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 (ii) 소독용 비누(제3401호)
 - (iii)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왁스광택제(제3405호)
- (c) 소독제·살충제 등으로서,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제3003호나 제3004호)
- (d) 실내용 조제 탈취제(소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307호)



[소호해설]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prima facie*)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38.09 -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10 -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기타

3809.91 --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3809.92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3809.93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보통 실·직물·종이·판지·가죽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종류의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을 분류한다(이 표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과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벌커나 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제조공업과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조성과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과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들을 포함한다.

(A)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

- (1) **제품의 촉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품** : 예를 들어, **경화제(硬化劑 : stiffening agent)**[일반적으로 천연의 전분질(밀·쌀·옥수수·감자의 텍스트린(dextrin))·점액성물질(지의(地衣)·알긴산염 등)·젤라틴·카세인(casein)·식물성 검(gum)(트라가칸트검(gum tragacanth) 등)·로진(rosin)을 기본 재료로 한 것]; **중량제(weighting agent)**; **유연제(softening agent)**[글리세롤(glycerol)·이미다졸린(imidazoline) 유도체 등을 기본 재료로 한 것]; **충전제(filler)**(천연이나 인조의 고분자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또한 앞에서 설명한 기본구성물질 이외에 어떤 조제품은 습윤제(비누 등)·윤활제[건성유(乾性油)·왁스 등]·충전제(고령토·황산바륨 등)와 보존제(특히 아연염·황산구리와 페놀)를 함유하고 있다.

- (2) **슬립방지(non-slip)와 스넵방지(anti-snap) 완성제** : 이들 물품은 직물의 슬립현상(slipping)을 감소시켜 메리야스류와 니트웨어에서 스넵(snags)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중합물·천연 수지나 규산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 (3) **방진(dirt-repellent) 완성제** : 일반적으로 규산·알루미늄화합물·유기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 (4) **주름방지(anti-crease)와 수축방지(anti-shrink) 조제품** :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관능기를 가진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예: 비스(bis)-(히드록시메틸(hydroxymethyl)) 화합물·특정의 알데히드(aldehyde)와 아세트알]을 혼합시킨 물품

- (5) **탈윤제(delustring agent)** : 직물의 광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제품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안료[산화티타늄(titanium oxide)·산화아연(zinc oxide)·리토포(lithophone) 등](셀룰로오스 에테르(cellulose ether)·젤라틴·글루(glue)·계면활성제 등으로 안정화되어 있다)에 현탁(懸濁 : suspension)시킨 것이다.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페인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양모의 가유(加油)나 가지(加脂)용 윤활조제품(제2710호·제3403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6) **난연제(flame-retardant preparation)** : 암모늄염·붕소화합물·질소화합물·브롬화합물·인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산화안티모니(antimony oxide)·그 밖의 산화물이 첨가된 염화유기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여 조성된 것
- (7) **광택제(lustring agent)** : 직물에 광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파라핀(paraffin)·왁스·폴리올레핀(polyolefin)·폴리글리콜(polyglycol)을 유화(乳化)시킨 것이다.
- (8) **매염제(mordant)** : 직물의 염색과 날염공정에서 염료를 섬유에 고정시키기 위한 조제품이다. 이 조제품은 물에 녹으며 또한 보통 금속염[예: 알루미늄·암모늄·크롬·철의 황산염이나 초산염(acetate)·중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타르타르산안티모니칼륨(antimony potassium tartrate)]이나 탄닌(tannin)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해설서 끝에 있는 제외규정(d)를 참조할 것].
- (9) **염색캐리어(dye carrier)** : 이는 합성섬유를 팽창시켜서 염색과 나염 공정을 촉진 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비페닐(biphenyl)·벤젠(benzene)·페놀(phenol)·히드록시톨루인산(hydroxytoluic acid)의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예: 트리클로로벤젠(trichlorobenzene)·비페닐-2-올(biphenyl-2-ol)·메틸히드록시톨루에이트(methyl hydroxytoluate)와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10) **펠팅방지제(non-felting agent)** : 동물성 섬유의 펠팅(felting)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으로서, 염화제나 산화제에 속하거나 합성수지 형성물질로 조성된 물품이다.
- (11) **사이징제(sizing agent)** : 방직 공정 중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에 바르는 것이다. 이 조제품은 보통 전분·전분 유도물이나 그 밖의 천연이나 합성의 중합 결합제를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또한 습윤제·유연제·지방·왁스·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유화(乳化 : emulsified) 상태의 경사 사이징 왁스(warp sizing wax)와 사이징용으로 조제한 유화(乳化)상태의 지방을 분류한다.
- (12) **발유제(oil-repellent)** : 직물에서의 발유(oil-repellent)가공을 위한 것이다. 보통 유기 플루오르화물(organic fluorine compound)[예: 과플루오르화카르복시산(perfluorinated carboxylic acid)]의 유화액이나 용액이며 변성화된 수지익스텐더(resins extender)를 포함하기도 한다.
- (13) **발수제(water-repellent agent)** : 보통 발수(water-repellent)성 물품(예: 왁스나 라놀린)의 수성유제(水性乳劑 : aqueous emulsion)로서 셀룰로오스 에테르(cellulose ether)·젤라틴·글루(glue)·유기계면활성제 등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알루미늄염·지르코늄염(zirconium)과 같은 용해성 염류를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실리콘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과 플루오르(fluorine)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도 포함한다.

(B) 제지(종이·판지)공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

- (1) **접결제(binder)** : 도료용 혼합물 내의 안료입자를 결합(bind)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카세인(casein)·전분·전분유도체·대두단백질·동물 글루(glue)·알긴산염·셀룰로오스 유도체와 같은 천연생산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다.
- (2) **사이징제(sizing agent)나 사이징 첨가제(sizing additive)** : 종이 공정에서 인쇄적성·평활도·광택을 증진시키고 필기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로진(rosin)비누·강화수지·왁스분산제·파라핀분산제·아크릴 중합체·전분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식물성 검(gum)을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 (3) **습윤 강도 증진제(wet strengthening agent)** : 젖은 종이나 부직포의 인장 강도(引張強度 : tensile strength)·인열 강도(引裂強度 : tearing strength)·파열 강도(破裂強度 : bursting strength)와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제품이다.

(C) 가죽공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

- (1) **결합제(binder)** : 가죽에 안료 색소를 부착(anchor)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제품으로 보통 단백질·천연 수지·왁스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특별히 조성한 것이다.
- (2) **씨이즌(season)** : 가죽을 완성 가공할 때 최종 표면 실(surface seal)로 사용하도록 조성된 물품이다. 이 물품의 구조와 조성은 수지나 앞에서 설명한 (1)의 결합제와 유사하다.
- (3) **방수제(waterproofing agent)** : 이 물품은 보통 (i) 크로뮴비누(chromium soap)·(ii) 알킬숙신산(alkylsuccinic acid)·시트르산유도체(citric acid derivative) 등을 용제(溶劑 : solvent)[예: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 용해하거나 (iii) 플루오르-케미칼(fluorochemical)을 용해하거나 분산시켜서 만든다.

위에서 **제외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방직용 섬유재료·원피·모피·그 밖의 재료의 기름 처리나 그리스 처리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 (**제2710호나 제3403호**)
- (b)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보통 **제28류나 제29류**)
- (c) 안료·조제 착색제·페인트 등(**제32류**)
- (d) 유기계면활성제나 조제 유기계면활성제(예: **제3402호**의 염색보조제)
- (e)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과 전분이나 텍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제3505호**)
- (f) **제3808호**의 살충제와 그 밖의 조제품
- (g) 중합체의 에멀전(emulsion)·분산액(dispersion)이나 용액(solution)(**제3209호나 제39류**)

38.1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3810.90 - 기타

- (1)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 조제품(pickling preparation)** :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에서 산화물·금속스케일(scale of metal)·녹·오점을 제거하거나 특정의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데 사용한다. 침지공정(pickling process)은 완성공정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금속의 인발(引拔 : drawing)이나 압출(extruding)조작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수도 있으며, 금속을 도장[예: 아연도금·금속증착(metallising)·주석도금·클래딩(cladding)·전기도금·페인트도장 등]하기 전에 행하는 경우도 있다.

침지 조제품(pickling preparation)은 보통 묽은 산(dilute acid)[염산·황산·플루오르화수소산·질산·인산 등]을 기본 재료로 하며, 금속부식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알칼리(예: 수산화나트륨)를 기본 재료로 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금속 세척조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제3402호).

- (2) **납땜(soldering)용·땜질(brazing)용·용접(welding)용의 용제(flux)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 용제는 납땜·땜질이나 용접할 때 금속의 접합을 용이하게 하고 접합된 금속표면을 보호하고 납땜(solder) 그 자체를 산화물로부터 방지하는데 사용한다. 용제는 작업 중에 생기는 산화물을 용해하는 특성이 있다. 염화아연·염화암모늄·제사붕산나트륨·로진(rosin)·라놀린(lanolin)은 이러한 보조제품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알루미늄 알갱이나 알루미늄 가루에 여러 가지의 금속산화물(예: 산화철)을 혼합한 것으로 용접할 때 고열발생제(알루미늄노출열법)로서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 (3) **납땜(soldering)용·땜질(brazing)용·용접(welding)용의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된 것** :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촉시키는데 사용한다.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 주석·납·구리 등을 함유한 합금이다)이다. 이러한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금속은 물론 금속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며, 이 성분은 앞 (2)에서 설명된 보조 조제품이다.

(b) 가루상태나 페이스트(paste)상태로 된 것

납땜용·땜질용·용접용의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금속가루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상호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성분에 따라 제71류나 제15부).

- (4) **용접용 전극(electrode)이나 용접봉(rod)의 코어(core)·피복(coating)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 : 이것은 주로 용접 작업 중에서 생기는 산화물을 제거하려는[가용성 슬래그(slag)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조제품이다. 그 성분은 예를 들어 석회(lime)와 고령토(kaolin)를 함유한 내화성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이나 금속산화물제로 만든 전극(電極 : electrode)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311호).

38.11 - 안티녹(anti-knock)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gum inhibitor)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 안티녹(anti-knock)제

3811.11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3811.19 -- 기타

- 윤활유 첨가제

3811.21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3811.29 -- 기타

3811.90 - 기타

이 호의 물품은 광물유(mineral oils)나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액체용 첨가제인데,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특성을 부가시키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A) 광물유 조제 첨가제(prepared additive for mineral oil)

1. - **원유첨가제(additive for crude oil)** : 이 그룹에는 금속구조물[특히 증류탑(distillation column)]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유에 첨가하는 부식방지제를 포함한다. 그들의 활성(active) 성분은 보통 이미다졸린(imidazoline)으로부터 유도된 아미노타입(amino-type) 물질로 되어 있다.
2. - **가솔린첨가제[additive for gasoline(petrol)]**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안티녹제(anti-knock preparation)** : 이것은 너무 이른 점화에 대한 연료의 저항력을 증가시켜서 노킹(knocking)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통 이들은 테트라에틸납(tetraethyllead)과 테트라메틸납(tetramethyllead)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며, 또한 예를 들면, 1·2-디브로모에탄이나 모노클로로나프탈렌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유연 안티녹(leaded anti-knock)제의 저장탱크로부터 얻어지고 본질적으로 납·납 화합물과 산화철로 이루어진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sludge)를 포함하지 않는다(제2620호).
 - (b)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제는 페놀성 물질[예: 디메틸-터셔리-부틸페놀(dimethyl-tert-butylphenol)]과 알킬 파라-페닐렌디아민(alkyl p-phenylenediamine)과 같은 방향성 아민(aromatic amine)의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 (c) **부동(不凍)조제품(anti-icing preparation)** : 이는 연료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솔린에 첨가되는 알코올[예: 프로판-2-올(이소프로필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물질이다.
 - (d) **세정제(detergent)** : 기화기(carburettor) 청결과 실린더의 흡입과 배기를 청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이다.
 - (e) **검화억제제(gum inhibitor)** : 이들 물품은 기화기나 엔진흡입구에서 검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 **윤활유첨가제(additives for lubricating oil)**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점도향상제(viscosity improver)** : 폴리메타아크릴레이트 · 폴리부텐 · 폴리알킬스티렌과 같은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b) **유동점 강하제(pour-point depressant)** : 이것은 저온에서 결정의 집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범주의 물품은 에틸렌 중합물 · 비닐에스테르(vinyl esters)와 에테르(ethers) · 아크릴 에스테르(acrylic esters)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 (c)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보통 페놀이나 아미노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d) **극압첨가제[extreme pressure (EP) additive]** : 아연 · 황화유 · 염소화탄화수소 · 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티오인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e) **세정제(detergent)와 분산제(dispersant)** : 알루미늄 · 칼슘 · 아연 · 바륨과 같은 특정 금속의 나프텐산염 · 석유술폰산염 · 알킬페녹사이드와 같은 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f) **녹방지제(rust preventative)** : 칼슘 · 바륨의 유기염(술폰산염), 아민 · 알킬숙신산(alkylsuccinic acid)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g) **거품억제제(foam inhibitor)** : 보통 실리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에 소량으로 첨가하기 위한 윤활성 조제품(예: 엔진 실린더의 마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은 **제외한다**(제2710호나 제3403호).

4. - **그 밖의 광물유(mineral oil) 첨가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유동점 강하제(pour-point depressant)** : 앞에서 설명한 3(b) 윤활제로 사용하는 것들과 유사한 것임
- (b)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이들은 가솔린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 (c) **가스오일용 세탄가 향상제(cetane number improver)** : 예를 들면, 알킬질산염과 알킬아질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d) **비축오일의 침강물(아스팔틴)[sediment(asphaltene)] 형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면활성을 가진 첨가제**
- (e) **연소실이나 용광로의 연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침전물[예: 회(ash) · 카본블랙(carbon black)]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첨가제** : 열전도구조물이나 굴뚝에서의 휘발성 물질(예: SO₂와 SO₃)에 의한 부식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
- (f) **부동(不凍)조제품(anti-icing preparation)** : 연료 기관 내에서의 결빙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된다.

(B) 광물유(mineral oil)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에 첨가하는 것

광물유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는 액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연료[예: 가소홀(gasohol)]

(b) 합성윤활유(synthetic lubricant)

- (1) 유기산의 에스테르(ester)[아디페이트(adipate) · 아질레이트(azelate) · 네오펜틸폴리올 에스테르(neopentylpolyol ester)]나 무기산의 에스테르(ester)[트리아릴 포스페이트(triaryl phosphate)]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 (2) 폴리에테르(polyether)[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나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 (3) 실리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첨가제는 광물유(mineral oil)에 상응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한다.

이 호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보통 제28류나 제29류) · 조제품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은 석유슬론 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이황화몰리브덴(molybdenum disulphide)을 기본 재료로 한 윤활성 조제품(**제3403호**)
- (b) 오일이나 그 밖의 매체에 현탁(懸濁 : suspension)된 콜로이드(colloid) 흑연과 반콜로이드(semi-colloid) 흑연(**제3801호**)

38.12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3812.20 -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31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3812.39 -- 기타

이 호에서 “복합(compound)”·“조제(prepared)”와 “조제품(preparation)”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의도적인 혼합물(mixture)과 조합물(blend) ; 그리고

(ii) 제3823호의 지방산이나 지방성 알코올과 같은 동족계열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반응혼합물

(A)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이 범주에는 가황물에 보다 더 좋은 물리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가황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온도를 저하하기 위하여 가황하기 전에 고무에 첨가되는 물품을 분류하며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혼합물만 분류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유기 물질(디페닐구아니딘·디티오카르바에이트·티우람설과이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머카프토벤조티아졸 등)을 기본 재료로 하며, 무기활성제(산화아연·산화마그네슘·산화납 등)와 화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고무용 복합가소제·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범주에는 플라스틱에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flexibility)을 주거나 고무 혼합물의 가소성(plasticity)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합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분류한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에는 제3823호의 혼합 지방성 알코올로부터 생성된 혼합 디알킬프탈레이트(dialkyl phthalate)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프탈레이트 에스테르(phthalate ester)를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가소제(可塑劑)는 폴리(염화비닐)와 셀룰로오스에스테르(cellulose ester)에 널리 사용한다.

이 호에는 가소제(可塑劑)로 사용하거나 종종 가소제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이 해설서 끝의 제외규정을 참조).

(C) 고무용 산화방지요제품·플라스틱용 산화방지요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이 범주에는 고무용 산화방지요제품·플라스틱용 산화방지요제품(예: 고무를 제조할 때 경화(hardening)나 노화(ageing)방지요제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는데,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혼합 알칼리성 디페닐아민(diphenylamine)과 엔나프틸아닐린(N-naphthylaniline)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과 같은 것이 있다.

또한 이 범주에는 고무용·플라스틱용 그 밖의 복합 안정제(compound stabiliser)를 분류한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의 예에는 제3823호의 혼합 지방성 알코올로부터 얻어지는 혼합 유기주석화합물과 같은 반응혼합물은 물론 안정제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의 주 용도는 폴리(염화비닐)와 같은 특정 중합체의 탈 염화수소화를 막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폴리아미드용 열안정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27류**의 석유·석유젤리·파라핀왁스와 아스팔트
- (b)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예: 프탈산디옥틸(dioctyl phthalate)]
- (c) 광물유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액체에 대한 첨가제로서의 조제 산화방지제(**제3811호**)
- (d) 고무가공용 해교제(peptiser)[화학적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로 알려진 경우라도](보통 **제3824호**)
- (e) **제39류**의 중합체

38.13 -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소화기용 조제품** : 중탄산염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을 포함하며 여기에 예를 들어, 장미과의 상록수껍질의 추출물(extract)·감초 추출물이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모포상의 거품(표면을 뒤덮는 거품)을 생성시키는 것을 돕는 것도 있다. 이러한 조제품들은 액체나 건조물이다.
- (B) **소화기용 장전물(charge)** : 소화기에 내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경량(輕量)의 용기(유리·금속판 등으로 만든) 속에 다음 각 호의 1을 함유한 것
 - (1) (A)에서 설명된 종류의 조제품, 또는
 - (2) 둘 이상의 비혼합물(예: 황산 알루미늄의 용액·탄산수소나트륨의 용액)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고 사용하는 순간에 접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는
 - (3) 단일한 비혼합물[예: 사염화탄소·브롬화메틸(methyl bromide)과 황산]
- (C) **장전된 소화탄** : 소화제(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용기에 장전한 것으로서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리나 도자기제 용기로서 불 속에 집어던져 파열하여 그 내용물이 방출하거나 유리제용기의 끝을 손가락 사이에 넣고 깨트려 소화제를 사출하도록 되어 있다.

휴대용의 것이거나 소화제를 장전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핀(pin)으로 조작하거나·위쪽으로 돌리는 방법·방아쇠를 당기는 방법 등으로 조작하는 소화기(fire-extinguisher)는 **제842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소화제의 성질이 있는 비혼합화학물품으로서 (B)(2)·(B)(3)와 (C)에서 설명된 이외의 상태일 때에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28류**나 **제29류**).

**38.14 -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 바니시(vanish) 제거제**

이 호에는 유기용제(organic solvent)와 시너(thinner)(석유를 전 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나,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시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하거나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아세톤·초산메틸과 메탄올의 혼합물·초산에틸·부틸 알코올(butyl alcohol)과 톨루엔(toluene)의 혼합물
- (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 기계부분품용 탈지(脫脂)조제품
 - (i)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을 함유하는 백정(white spirit)
 - (ii) 염소 처리한 물품과 크실렌(xylene)을 함유하는 휘발유(petroleum spirit)

이 호에는 소량의 파라핀왁스(paraffin wax)[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유화제·겔화제 등을 첨가한 앞에서 설명한 혼합물로 구성된 페인트나 바니시 제거제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화학적으로 단일한 용제(溶劑 : solvent)·희석제(일반적으로 **제29류**)와 용제(溶劑)·시너(thinner)로 사용하는 복합성분이지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예: 솔벤트 나프타(**제2707호**), 백정(white spirit) (**제2710호**), 검(gum)·우드(wood)나 황산 테레빈유(**제3805호**), 목(木)타르유(wood tar oil)(**제3807호**), 무기복합용제(**제3824호**)]
- (b) 소매용으로 포장된 손톱 바니시 제거용 용제(溶劑)(**제3304호**)

38.15 -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 ·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3815.12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3815.19 -- 기타

3815.90 - 기타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시키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a) 첫째 그룹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서포트(support) 위에 임혀져 있는 하나나 둘 이상의 활성(active)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서포트된 촉매(supported catalyst)”라고 불린다] 활성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활성물질은 특정의 금속·금속 산화물·그 밖의 금속화합물이나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이들 촉매용 금속이나 화합물에 주로 사용하는 금속은 코발트·니켈·팔라듐·백금·몰리브덴·크로뮴·구리·아연이다. 서포트(support)(활성화되기도 한다)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탄소·실리카 겔(gel)·규조토·도자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서포트된 촉매(supported catalyst)”의 예로는 서포트(support)된 지글러(Ziegler)나 지글러-나타(Ziegler-Natta)형이 있다.

(b) 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 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과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되어 있다.

(i) “유리기 촉매(free radical catalyst)”(예: 유기과산화물이나 아조화합물의 유기용액·레독스(redox) 혼합물) ;

(ii) “이온성 촉매(ionic catalyst)”(예: 알킬리튬) ;

(iii) “중축합반응용 촉매(catalyst for polycondensation reaction)”(예: 초산칼슘과 삼산화안티모니의 혼합물)

둘째 그룹에 속하는 조제품은 보통 중합체(polymer)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의 추출용이나 비금속(卑金屬) 화합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수명이 끝난 촉매(**제2620호**)와 주로 귀금속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수명이 끝난 촉매(**제7112호**)

(b)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제28류**나 **제29류**)

(c) 금속이나 금속 합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한 가루·직조한 거즈 등의 모양을 하고 있는 촉매(**제14부**나 **제15부**)

(d) 고무의 가황에 사용하는 조제 고무가황촉진제(**제3812호**)

38.16 -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es)를 포함하며,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점결제(예: 규산나트륨 · 마그네슘 · 규소플루오르화아연)를 첨가한, 샤모트(chamotte)와 다이냐스 어드(dinas earth) · 잘게 부수거나 부순 커런덤(corundum) · 가루 모양의 규암 · 초크 · 하소(煨燒)한 백운석과 같은 내화물을 기본 재료로 한 특정의 조제품[예: 용광로 라이닝(furnace lining)]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의 많은 물품들은 수경성(水硬性) 결합제와 같은 비내화성 점결제(粘結劑 : binder)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로스트왁스(lost wax) 공정에 의한 치과용이나 보석세공용 몰드(mould) 제조를 위한 실리카(silica)를 기본 재료로 한 내화복합물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추가적으로 내화재료[예: 노(爐)의 라이닝(lining)용]로 사용하는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를 포함한다. 이 물품은 주로 분쇄된 소결(燒結 : sintered) 백운석으로 구성된 가루나 알갱이 형태로 거래된다. 적용 분야나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비수경성 결합제(예: 타르 · 피치 · 수지)를 사용한다.

나아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물론 내열 수경시멘트(알루미늄성 시멘트)와 내화성 물질 집합체의 혼합물로 구성된 내화 콘크리트(concrete)도 분류하는데, 용광로 · 코크스 오븐(coke oven) 등의 기초나 용광로 라이닝(lining)의 이어 맞추기에 사용한다.

- (a) **내화성 “플라스틱(plastic)”으로 알려진 합성물** : 이것은 내화성 응집체 · 점토와 소량의 첨가제로 흔히 구성되어 있는 축축한 덩어리로 판매되는 물품
- (b) **래밍믹스(ramming mix)** : 이것은 (a)에 규정한 물품의 조성구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수지식 공기 래머(rammer)로 사용하면 조밀한 피복이나 충전층을 형성한다.
- (c) **분사용 혼합물(gunning mix)** : 이것은 수경제(hydraulic setting)나 그 밖의 점결제와 혼합된 내화성 응집물로서, 때때로 이들이 뜨거운 경우에도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노즐을 통해서 그 혼합물을 분사하는 특수 총에 의해서 로(furnace)의 라이닝(lining)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제3801호**의 탄소질 페이스트(paste)는 **포함하지 않는다**.

38.17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 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혼합알킬벤젠(mixed alkylbenzene)**과 **혼합알킬나프탈렌(mixed alkyl-naphthalene)**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벤젠과 나프탈렌의 알킬화에 의하여 얻어지며 상당히 긴 측쇄(side-chains)를 가지고 있고 제2707호의 두 번째 부분에 규정한 물품과는 다르다. 혼합 알킬벤젠은 특히 용제(溶劑: solvent)로 사용하며 또한 계면활성제 · 윤활제와 절연유의 제조에 사용한다. 혼합 알킬나프탈렌은 주로 알킬나프탈렌 술폰산과 그 염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제2902호**의 이성체 혼합물을 제외한다.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 된다

- (1) 보통 100만분의 1의 비율로, 붕소나 인으로 제28류의 화학원소[예: 실리콘과 셀렌(selenium)]을 도프처리된(doped) 것(이들은 디스크 모양·웨이퍼(wafer)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이나 실린더 모양·막대 모양의 것은 **제28류**에 분류한다.
- (2)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 낮은 비율로 특정 첨가제(예: 게르마늄·요드)를 함유하고 있는, 셀렌화카드뮴과 아황산카드뮴·비산인듐 등과 같은 화학화합물[실린더·로드(rod) 등의 모양인지 여부나, 디스크 모양·웨이퍼(wafer)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전달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그러한 결정물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광택낸 것인지와 균일한 에피택셜층(uniform epitaxial layer)으로 도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가공한 것(예: 선택확산에 의한 것)은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제8541호**에 해당한다.

38.19 -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유압 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 전동(transmission)액**을 분류하는데, 이들의 예로는 피마자유(蓖麻子油 : castor oil) · 2-에톡시에탄올이나 디리시놀레산 에틸렌과 부틸알코올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이나 글리콜 혼합물은 물론 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 알코올) · 프탈산디에틸과 프로판-1, 2-디올로 구성된 것이 있다.

이 호에는 폴리글리콜(polyglycol) · 실리콘이나 제39류의 그 밖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수압용액도 분류한다.

그러나 석유(petroleum oil)나 역청유(瀝靑油 :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인 유사한 용액은 **제외한다(제2710호)**.

38.20 -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이 호에는 부동(不凍 : anti-freezing)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예: 글리콜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을 분류한다.

일부 부동(不凍) 조제품은 냉각제나 열교환제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광물유(mineral oil)나 광물유용과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용액용의 조제 첨가제는 **제외한다(제3811호)**.

38.21 -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 인간 ·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이 호에는 박테리아 · 곰팡이 · 세균 · 바이러스 · 그 밖의 미생물 · 식물 세포 · 인간 세포 · 동물 세포를 의약용(예: 항생물질을 얻기 위하여) · 그 밖의 과학용 · 공업용(예: 식초 · 유산 · 부틸알코올의 제조)의 목적으로 배양 · 번식 ·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보통 육(肉)추출물(extract) · 신선한 피 · 혈청 · 알(egg) · 감자 · 알긴산염(alginate) · 한천(寒天 : agar-agar) · 펩톤(peptone) · 젤라틴 등으로 조제되며 글루코스(glucose) · 글리세롤 · 염화나트륨 · 시트르산나트륨 · 염료와 같은 부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산도(acidity)나 알칼리도(alkalinity)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 · 소화효모 · 알칼리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백질이 없는 배양제도 있다. 예: 염화나트륨 · 염화칼슘 · 황산마그네슘 · 황산수소칼슘 · 아스파라긴산칼륨 · 유산암모늄을 증류수에 혼합한 것

특정 바이러스용 배양제는 살아있는 배(胚 : embryo)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보통 액체 상태(끓은 수프 상태) · 페이스트(paste) 상태 · 가루 모양이지만 둥글넓적(tablet)하거나 가루 모양인 것도 있으며, 살균하여 유리병 · 튜브 · 앰플 · 관에 봉입되어 있다.

이 호에는 배양제로서 조제하지 않은 비혼합물은 **제외한다**. 예:

- (a) 한천(寒天 : agar-agar)(**제1302호**)
- (b) 혈액알부민(blood albumin)이나 알의 흰자위(egg albumin)(**제3502호**)
- (c) 젤라틴(gelatin)(**제3503호**)
- (d) 펩톤(peptone)(**제3504호**)
- (e) 알긴산염(alginate)(**제3913호**)

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22.11 -- 말라리아용

3822.12 -- 지카(Zika)와 그 밖의 질병용[아에데스(*Aedes*)속의 모기가 전염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3822.13 -- 혈액형 분류용

3822.19 -- 기타

3822.90 - 기타

이 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혈액형 분류용 시약을 포함하고, 제3006호의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진단용 시약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포함한다.

진단용 시약(diagnostic reagent)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과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prepared diagnostic reagent)은 생체 내(*in vivo*)가 아닌 시험관 내(*in vitro*)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실험실용 조제시약은 의학·수의학·과학·산업 실험실, 병원, 산업, 현장 또는(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리트머스종이, pH 시험지, 폴-파닝딩(pole-finding) 종이 또는 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처럼 하나 이상의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이 침투(impregnation)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는 종이·플라스틱·그 밖의 물질(뒤편보강이나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여러 개의 물질로 구성된 키트형태로 포장할 수 있다(하나 이상의 요소는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제3204호의 합성착색제와 분리하여 제시하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그 밖의 물질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키트의 예를 들면, 혈액 속의 글루코오스(glucose) 측정·소변 속의 케톤(ketone)을 측정하는 것 등과 효소를 기본 재료로 한 것들이 있다.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시약·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레이블·시험관(*in vitro*)용이나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뒤편 보강이나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

진단용 키트(diagnostic kit)는 응집·침전·중화·보체결합·적혈구응집·효소결합면역흡착 측정(ELISA) 등과 같은 반응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열원충 젯산 탈수소효소(pLDH)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를 기반으로 한 말라리아 진단 키트도 여기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3006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진단용 키트[예: 공인된 임상시험용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는 **제외한다**.

혈액형 분류용 시약(blood-grouping reagent)도 여기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시약은 혈액형 분류에 직접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얻은 혈청이거나, 식물의 종자나 그 밖의 부분에서 얻은 식물성 추출물[식물성 응집소(phytagglutinin)]이다. 이 시약은 혈구나 혈청의 특징을 참조하여 수행하는 혈액형 분류 용으로 사용한다. 이 시약에는 활성 주성분에 더하여, 시약의 활성도를 높이거나 시약을 안정시키기 위한 물질(방부제·항생제 등)을 함유할 수 있다.

A. 다음의 물품은 **혈구의 특징**에 의하여 혈액형 분류의 판정에 사용하는 시약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다.

- (i) A·B·O·AB형·A1과 A2 서브그룹·팩터 H의 검사용 조제품
- (ii) M·N·S·P형과 Lu·K·Le 등의 형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
- (iii) Rh형과 Cw·F·V 등의 서브그룹 검사용 조제품
- (iv) 동물의 혈액형 검사용 조제품

B. 다음의 물품은 **혈청의 특징**(혈액형)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시약(reagents)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다.

- (i) Gm·Km 등의 계열의 특징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 ;
- (ii) Gc·Ag 등의 혈청형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

C. 항-인간 글로불린 혈청(anti-human globulin serum)[쿰스혈청(Coombs serum)]은 특정의 혈액형 분류법에 필요한 것으로, 이 호의 시약으로 인정된다.

가공하지 않은 혈청·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前)처리(further treatment)가 필요한 그 밖의 반(半) 완성(semi-finished)물질은 그 구성 물질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D. HLA성질(HLA항원)의 검사용 시약이 이 호에 분류하는데, 이들은 반드시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혈청이다. 이들 시약은 HLA항원 판정 대상 물질의 주변 혈액 림프구와 반응한다. 검사대상 물질의 HLA항원은 HLA검사 혈청의 반응 패턴을 기초로 판정할 수 있다. 활성성분뿐만 아니라, 그 시약은 안정제와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HLA A·B·C항원 검사용 조제품
- (b) HLA D R항원 검사용 조제품
- (c) HLA D항원 검사용 조제품
- (d) 서로 다른 범위의 HLA 항혈청을 함유하고 있는 HLA A·B·C의 검사용으로 완전한 (finished) 시약(예: 검사용 판)
- (e) HLA DR 인자 자리의 검사용으로 완전한(finished) 시약(예: 검사용 판)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인증표준물질을 분류하는데 있어 제3822호는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이 호에서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이란 기기의 보정·측정방법에 대한 평가나 물성치의 조정을 위해 조제된 표준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표준물질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을 수 있다.

- (a) 농도가 정확히 확인한 피분석 물질을 첨가한 기질 물질 ;
- (b) 혼합되지 않은 물질로서 특정 성분 농도(예: 분유에서 단백질과 지방의 함유량)를 정확히 확인한 것 ;
- (c) 특정 성질[예: 장력(張力 : tensile strength)·비중(比重 : specific gravity)]을 정확히 한 물질 (천연이나 합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6부
38.22

이러한 표준물질은 인증된 특성치(value of the certified property) · 그 특성치의 측정방법과 각 특성치의 정확도가 기재된 인증서와 인증기관이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호에서는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시약을 **제외한다**.

- (a)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의 물품(제6부의 주 제1호 참조) ;
- (b) 제28류의 주 제1호나 제29류의 주 제1호가 적용되는 물품 ;
- (c) **제3204호**의 착색제(제32류의 주 제3호에서 언급된 조제품을 포함한다) ;
- (d) 미생물(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세포 · 인간 세포 · 동물 세포의 성장 ·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제3821호**)

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 -- 스테아린산

3823.12 -- 올레인산

3823.13 -- 툴유(tall oil) 지방산

3823.19 -- 기타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A)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과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 고체(포화된)지방산과 액체(불포화)지방산의 분리는 보통 결정화[용제(溶劑 : solvent)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액체 부분은(상관례상 올레산이나 올레인으로 알려진) 소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올레산과 그 밖의 불포화 지방산(예: 리놀레산이나 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이나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낮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상업적인 스테아린산(스테아린)** : 이것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백색의 고체 물질이다. 이것은 비교적 단단하며 다소 부서지기 쉽고 보통 진주 모양 · 플레이크(flake) 모양 · 가루 모양으로 시판된다. 또한 이것은 등온(等溫 : isothermal) 탱크에서 더운 상태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액체상으로 시판되기도 한다.
- (2) **상업적인 올레산(올레인)** : 이것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무색에서 갈색까지의 유성 액체이다.
- (3) **툴유 지방산(TOFA : tall oil fatty acid)** : 이것은 주로 올레산과 리놀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툴유(crude tall oil)를 증류하여 얻어지며 지방산을 전 중량의 90% 이상(건조 중량에 의해 계산한다)으로 함유하고 있다.
- (4) **증류한 지방산** :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예: 야자유 · 팜유 · 텔로우(tallow)]를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한 후에 정제과정(증류)을 거쳐서 얻어진다.
- (5) **지방산 디스틸레이트** : 이것은 정제과정의 일부로서 수증기의 존재 하에 진공 증류를 함으로 얻어진 지방이나 기름에서 얻는다. 지방산 디스틸레이트(distillate)는 높은 유리지방산 성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 (6) **축매 산화하여 얻어진 지방산**(고분자합성 탄화수소를 원료로 한 것)
- (7) **지방이나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비교적 유리 지방산(free fatty acid)의 함유량이 많은 기름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기름을 정제할 때 얻어지는 소우프스톡(soap stock)을 무기산으로 분해하여 조제한 것]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순도(純度) 85%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올레산(**제2916호**)
- (b) 순도(純度) 90%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그 밖의 지방산(일반적으로 **제2915호**·**제2916호**·**제2918호**)

(B)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이 호에 분류하는 지방성 알코올은 이 호의 혼합 지방산[위의 (A) 참조]이나 이의 에스테르(ester)를 축매로 환원하거나·향유고래 기름을 검화(檢化 : saponification)하거나·올레핀(olefin)에 일산화탄소와 수소("Oxo"공정)를 축매반응하거나·올레핀을 수화하거나·탄화수소를 산화하거나·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한 비환식 알코올의 혼합물이다.

지방성 알코올은 보통 액체이나 고체의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지방성 알코올은 다음과 같다.

- (1) **라우릴 알코올(lauryl alcohol)** : 야자유에서 얻은 지방산을 축매 환원하여 제조한 포화지방성 알코올의 혼합물이며, 이는 상온(常溫)에서는 액체이나 한기(寒氣)에서는 반(半)고체이다.
- (2) **세틸알코올(cetyl alcohol)** : 세틸 알코올(cetyl alcohol)과 스테아릴 알코올(stearyl alcohol)의 혼합물이며, 전자가 주된 요소로서 고래 왁스와 향유고래 기름에서 얻어진다. 이는 결정으로 실온(室溫)에서 반(半)투명 고체이다.
- (3) **스테아릴 알코올(stearyl alcohol)** : 스테아릴 알코올(stearyl alcohol)과 세틸 알코올(cetyl alcohol)의 혼합물로 스테아린이나 유(油)분이 풍부한 스테아린산을 환원하여 얻어지거나, 향유고래기름을 수소 첨가처리(hydrogenation)와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한 후 증류한 것에서 얻어진다. 이는 실온(室溫)에서 백색 결정성 고체이다.
- (4) **올레일 알코올(oleyl alcohol)** : 올레인(olein)을 환원하거나 수압에 의하여 향유고래기름으로 유도한 알코올에서 얻는다. 이는 실온(室溫)에서 액체이다.
- (5) **제1지방족 알코올의 혼합물** : 보통 탄소 원자 수가 6에서 13까지의 알코올이다. 이는 액체로서 일반적으로 옥소("Oxo")법으로 제조된다.

위 (1)에서 (4)까지 열거한 지방성 알코올은 설펜화물의 유도체의 조제에 사용하며 이들의 알칼리염은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이다. 앞에서 설명한 (5)항의 지방성 알코올은 주로 폴리(염화비닐)용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도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순도(純度)가 90% 이상인 (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 화학적으로 순수한 지방성 알코올(보통 **제2905호**)은 **제외한다**.

3824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3824.1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 3824.30 -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824.40 -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 3824.5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 3824.6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이 류의 소호주 제 3호의 물품
- 3824.81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 3824.82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 3824.83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 3824.84 -- 엘드린(ISO), 캄페클로(ISO)(독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 · 디 · 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 3824.85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 3824.86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 3824.87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 3824.88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 3824.89 -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 기타
- 3824.91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 3824.92 -- 메틸포스포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 3824.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천연의 수지성 물품[예: 로진(rosin)] · 건성유 · 식물성 점액질 · 텍스트린(dextrin) · 당밀 · 제39류의 중합체 등을 기본 재료로 한 주물코어 점결제(foundry core binder)를 분류한다.

이들은 주물의 주형이나 코어용에 적합한 견고성을 주고 주조(cast)된 후에 모래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주물용 모래와 혼합하는 조제품이다.

그러나,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 전분이나 덱스트린·그 밖의 변성 전분(modified starch)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는 **제3505호**에 분류한다.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7)·(19)·(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전(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정 식료품을 조제할 때 그 성분으로서나 일부 특성의 개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화학품과 식료품·영양가가 있는 물질의 혼합물[예: 페이스트리(pastry)·비스킷·케이크와 그 밖의 베이커리의 품질 개량제]은, 그러한 혼합물이나 물질이 그 자체에 함유된 영양 내용물에 의하여 영양가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제2106호**에 분류한다(제38류 총설 참조).

이 호에서는 또한 수산화합물도 **제외한다(제2852호)**.

위에서 설명한 조건 이외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1) **나프텐산(naphthenic acid)**[특정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정제할 때의 부산물]과 **그 염**(제3402호의 수용성 나프텐산염·**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하는 염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칼슘·바륨·아연·망간·알루미늄·코발트·크로뮴·납 등의 나프텐산염을 포함하며 이 중 어떤 것은 광유(mineral oil)의 건조제나 첨가제의 조제에 사용하며 나프텐산구리(copper naphthenate)은 살균제의 조제에 사용한다.
- (2)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탄화텅스텐(tungsten carbide)·탄화몰리브덴(molybdenum carbide) 등]: 상호 혼합한 것이나 금속점결제(예: 코발트)와 혼합되었으며 제8209호의 도구에 사용하는 팁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 (3) **시멘트·모르타르(mortar)나 콘크리트(concrete)용의 조제 첨가제**: 예를 들어, 규산나트륨이나 규산칼륨과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 규산칼륨을 기본 재료로 한 내산(耐酸)첨가제와 예를 들면, 산화칼슘·지방산 등을 기본 재료로 한 방수조제품(비누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비내화성 모르타르(mortar)와 콘크리트(concrete)

(5) 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소르비톨(sorbitol)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높은 이당류와 다당류성분을 가지고 있는 포도당 시럽의 수소화 반응(어떠한 분리 과정의 발생함이 없이)에 의하여 얻는다. 이들은 결정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공업에 사용한다(예: 식료품·화장품·의료용품·플라스틱·섬유).

제29류의 주 제1호에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소르비톨(sorbitol)은 제2905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종류의 소르비톨은 보통 포도당이나 전화당(轉化糖): invert sugar의 수소화 반응에 의해서 얻어진다.

(6) 그 밖의 물질의 혼합물로서 제강공업에서 탈황제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 : 탄화칼슘·탄산칼슘(석회석)과 탄소나 형석(螢石: fluorspar)과 같은 것이다.

(7) 배양한 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제외한다] : 산화마그네슘이나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칼슘·플루오르화리튬·염화칼륨·염화나트륨·브롬화칼륨·브롬요오드화칼륨 등)의 할로젠화물로서 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것이다. 광학용으로 된 배양한 결정은 제외한다(제9001호).

한 개의 중량이 2.5 g 미만인 배양단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은 제28류·제2501호(염화 나트륨결정)·제3104호(염화칼륨 결정)에 각각 분류한다.

(8) 석유술폰산염 : 물에 녹지 않는 것에 한정하며, 석유나 석유 분획물을 예를 들면, 황산·발연황산·액체이산화에 용해된 삼산화황과 함께 술폰화함으로써 얻는다. 이 제조과정은 일반적으로 중화 후에 한다. 그러나 수용성 석유술폰산염(예: 알칼리 금속의 것·암모늄의 것·에탄올아민의 것)은 제외한다(제3402호).

(9) 폴리클로로비페닐(polychlorobiphenyl)(비페닐 염소화유도체의 혼합물)과 염화파라핀
다만, 인조 왁스의 성질이 있는 고체상태 폴리클로로비페닐과 고체상태 염화파라핀은 제외한다(제3404호).

(1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 상당히 저분자의 것으로 예를 들면, 디-·트리와 테트라(옥시에틸렌) 글리콜의 혼합물이다.

그러나 모든 그 밖의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제외한다(제3907호나 인조 왁스의 성격이 있는 것은 제3404호).

(11) 글리세롤의 모노-·디-·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emulsifiers)로 사용
단, 인조 왁스의 성격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3404호).

(12) 퓨젤유(fusel oil) : 가공하지 않은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을 정류할 때 얻는다.

(13) 디펠유(Dippel's oil)[콜유·동물유·제펠유(Jepel's oil)] : 반추동물의 땀나 땀을 건류하여 만들며 매우 끈끈하고 악취가 나는 흑색의 액체이다. 주로 살충제나 피리딘염기의 조제에 사용한다.

- (14) **이온교환체(ion-exchanger)**(염기나 산교환체를 포함하며 **제39류**의 중합체는 **제외한다**) : 이것은 녹지 않는 화합물로서 전해질의 용액과 접촉할 때 이온교환체의 1이온과 그 용액에 용해된 물질 속에 함유된 1이온과 교환하며 이 특성은 공업상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경수(hard water)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염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보일러용수·섬유·염료공업용수·세탁용수에 사용하며 염수를 음료수로 변환시키는데도 사용한다. 다만, 인조의 제올라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며, 점결체를 함유한 것은 예외로 한다)는 **제외한다(제2842호)**.
- (15) **스케일링방지제(anti-scaling compound)** : 보통 탄산나트륨·규산나트륨·탄닌(tannin) 등을 기본 재료로 하며, 경수(硬水 : hard water)에 첨가하여 용해되어 있는 대부분의 칼슘과 마그네슘의 염을 침전시켜 보일러·증기 발생관·그 밖의 물 순환장치에 석회질의 침적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 (16) **옥시리드(oxylith)**(옥시석) : 과산화나트륨에 소량의 구리염이나 니켈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이것은 물속에 넣어두면 산소의 방출을 조절한다. 모양은 흔히 입방체나 슬래브 모양이다.
- (17) **바니시나 글루 경화제(硬化劑)**(예: 염화암모늄과 요소의 혼합물)
- (18) **진공관용 게터(getter)** : 바륨·지르코늄 등을 기본 재료로 하며 보통 정제(pastille, tablet)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하거나 금속의 관(tube)이나 선(wire)에 부착되어 있다.
- (19)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 보통,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의 수용액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일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예: 클로르아민(chloramine)수용액] 한편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두 가지 화합물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동일 포장 내에 두 개의 병이 있고, 한 병에는 예를 들면, 아황산수소나트륨 수용액·다른 병에는 과망간산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다.
- (20) **소매용으로 포장된 등사판 원지 수정제(stencil corrector)** : 보통 핑크색의 섬유소 바니시(vernish)이며 일반적으로 소형 병 속에 들어있고 뚜껑에는 작은 브러시가 구비되어 있다.
이 바니시는 등사판 원지 수정제(stencil corrector)로서 소매용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 바니시용 유기혼합 희석제는 **제3814호**에 분류한다.
- (21) **소매용으로 포장된 수정액(correcting fluid)** : 안료·점결제·용제(溶劑 : solvent)를 주성분으로 한 불투명 용액(백색이나 그 밖의 색으로 착색)으로서 타이프문서·손으로 쓴 문서·사진 복사·오프셋 인쇄 마스터나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있는 오류·불필요한 표시를 감추는 데에 사용한다. 보통 작은 병(뚜껑에 보통 작은 브러시가 부착되어 있다)이나 깡통(tin) 또는 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액에 쓰이는 유기혼합희석제는 **제3814호**에 분류한다.
- (22) **소매용으로 포장한 수정용 테이프(correction tape)** :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디스펜서(dispenser)에 담겨져 제공되는 수정용 리본 두루마리로서 타이프문서·손으로 쓴 문서·사진복사·오프셋인쇄마스터나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있는 글씨·타이프 인쇄 오류·불필요한 표시를 감추는 데 사용한다. 이 제품은 여러 가지 다른 폭과 길이로 이용가능하다. 수정 리본은 리본의 표면에 도포된 불투명한 안료 코팅으로 형성되어 있다. 코팅은 수정하여야 할 부분 위에 전사(轉寫 : transfer) 헤드를 압착함으로써 도포된다.

이 호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점착성이 있는 뒤면을 가진 종이로 구성된 수정용 테이프 (**제48류**)

(나)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한다)(**제9612호**)

- (23) **주로 주류와 그 밖의 발효음료의 청정(淸澄 : clarifying)용으로 사용하는 조제품** :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아이징글라스(isinglass)·젤라틴·카라긴 모스(carrageen moss)·알의 흰자위(egg albumin)과 같은 폴리(비닐 피롤리돈)·젤라틴·알부민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그러나 효소를 함유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7호)**.
- (24) **페인트용 혼합증량제(extender)** : 페인트[디스템퍼(distemper)는 제외한다]에 첨가하여 그 가격을 인하하고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페인트의 성질을 향상(예: 착색안료의 전착을 용이하게 한다)시키는 조제가루이다. 또한 디스템퍼(distemper)의 제조에 사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안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조제품의 성분은 둘 이상의 천연생산물[초크·천연 황산바륨·슬레이트(slate)·백운석·천연탄산마그네슘·석고·석면·운모·활석·방해석 등]의 혼합물·이러한 천연생산물에 화학품을 혼합한 것·화학품(예: 수산화알루미늄과 황산바륨의 혼합물)의 혼합물이다.
- 이 범주에는 곱게 부순 천연탄산칼슘[“샴페인 화이트(Champagne white)”]도 포함되는데, 각각의 입자는 특별한 처리에 의해서 스테아르산의 발수성 막으로 도포되어 있다.
- (25) **특정 요업제품(의치 등)제조용 조제품**[예: 고령토·석영·장석(長石 : feldspar)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 이 범주에는 또한 산화지르코늄(ZrO_2)과 그 밖의 다른 산화금속을 기본재료로 하는 치과용 지르코니아 제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의치나 치아용 보철물의 최종적인 형태를 얻기 위한 여러 과정들[예: 밀링·소결(燒結)·광택가공]을 거친 후에 의치(artificial teeth)나 치아복원에 사용할 수 있다.
- (26) **용융성(鎔融性 : fusible) 요업내화도 측정물**[세겔콘(Seger cone) 등] : 보통 피라미드(삼각추)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라믹 페이스트(paste)와 유약 조제품과 유사한 물질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그 성분의 배합에 따라 연화되고 적정 온도에서 용융(鎔融 : fused)하며 도자기와 같은 제품의 소성을 조절하는데 사용한다.
- (27) **소다석회(soda-lime)** : 수산화나트륨을 순수한 석회에 스며들게 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재호흡 마취시스템·잠수함 등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한 소다석회(soda-lime)는 **제외한다(제3822호)**.
- (28) **코발트염(cobalt salt)**으로 착색된 수화실리카 겔(hydrated silica gel) : 건조제로 사용하며 건조력이 없을 때에는 그 색상이 변한다.
- (29) **방청조제품** : 예를 들면, 화학적으로 녹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인산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일 수도 있다.
- 윤활유를 기본 재료로 한 방청조제품은 경우에 따라 **제2710호**나 **제3403호**에 분류한다.
- (30) **사카린(saccharin)이나 그 염과 중탄산나트륨(탄화수소나트륨)타르타르산과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조제품(예: 정제)**으로서 감미 목적에 사용하나 식품이 아닌 것
- (31) **염지(鹽池 : curing)용이나 염장(salting)용 소금** : 염화나트륨에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이나 질산나트륨(질산염)을 첨가한 것
- 이 물품에 설탕을 첨가한 것은 **제2106호**에 분류한다.

(32) **특정 종류의 절단된 압전기 소자로서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제7103호나 제7104호에 해당하는 석영·전기석 등은 제외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압전기 소자의 제조용 재료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a) 로셀염(세이네트염, 즉, 타르타르산칼륨나트륨 사수화물) ; 타르타르산에틸렌디아민 ; 암모늄·루비듐·세슘의 오르토인산염과 이들의 혼합결정
- (b) 티탄산바륨 ; 지르콘산티탄연 ; 메타니오브산연 ; 지르콘산 스트론튬 티탄연 ; 티탄산 칼슘 ; 등

소자(element)는 고급품질의 배양결정을 그 전기적 축에 따라 정밀 절단하여 얻는다. 그 성분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서 결정의 절단 처리 전의 것일 때에는 **제28류**나 **제29류**의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앞에서 설명한 (b)의 다결정(polycrystalline) 극성(polarised) 소자를 분류하지만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3) **전도대(transmission belt) 슬립방지(anti-slip) 조합제** : 지방질·연마제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중량비율이 70% 이상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한 것이라고 포함한다.

(34) **특정 치료제(예: 항생제)의 제조용 중간 제품** : 발효·여과와 초기 단계의 추출에 의해서 미생물의 도움으로 얻어진 것이며, 보통 70% 이하의 활성(active)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 [예: 클로로테트라시클린(오레오마이신) 제조용 중간제품으로서 불활성 균사·보조제와 10%부터 15%까지의 클로로테트라시클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칼리성 케이크(alkaline cake)”].

(35)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 : 예를 들면, 옥살산(oxalic acid) 형태의 에스테르(ester)와 과산화수소를 용제(溶劑 : solvent)와 형광성 화합물의 존재 하에 화학 반응시킴으로써 조명효과를 얻는 조명 봉(lightstick)

(36) **가솔린 엔진용의 시동액** :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 석유(전중량이 70% 이상) 및 그 밖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디에틸에테르가 기본 구성성분이다.

(37) **가루 상태의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물에 혼합한 후에 사용한다)** : 이 가루는 약 30%의 호밀 가루와 약 30%의 목재 셀룰로오스에 시멘트·글루(glue)와 초크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3407호의 조형용 페이스트(modelling paste)는 **제외한다.**

(38) **“플래팅 안료[flatting pigment(s)]”** : 변성한 수지산의 알루미늄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입자는 용제(溶劑 : solvent)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셀룰로오스 에테르(cellulose ether)로 도포되어 있다.

(39) **“어류비늘 페이스트(fish-scale paste)”나 “어류구아노(fish guano)”** : 백정(white spirit)으로 어류의 비늘을 처리하여 얻어진 가공하지 않은(crude) 상태의 은색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아닌(guanine)성분 때문에, 정제한 후에 진주에센스(pearl essence)용에 사용한다.

- (40) **브롬화요드 탈륨(thallium bromoiodide) 결정** : 브롬과 요드의 고용체(固溶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광학적 특성(적외선복사에 대한 높은 투명성)에 따라 사용한다.
- (41) **겔 화제**(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를 유기 친화성의 것이 되도록 특별한 처리를 한 후 크림같은 흰색 가루 상태로 만든 몬모릴로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유기조제품[페인트·바니시·비닐중합체분산물·왁스·접착제·매스틱(mastic) 화합물·화장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 (42) **공업용 지방산**
- (i) 이중체화한 것(dimerised)
 - (ii) 삼중체화한 것(trimerised)
 - (iii) 아밀 알코올로 에스테르화(esterified)한 후에 에폭시화한 것
- (43) 공업용 산화몰리브덴·탄소와 붕산을 **덩어리로 한 혼합물로서**, 철강을 제조할 때 합금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
- (44) **거래할 때 “회색산화물(grey oxide)”이나 “흑색산화물(black oxide)”로 표기되는 가루 [때때로 “납의 더스트(lead dust)”로 잘못 호칭되기도 한다]** : 이것은 일산화납(65%부터 80%까지)와 납금속[나머지 부분(the balance)]을 혼합하여 특별히 조제한 것으로서 불밀 공정에서 순수 아연을 조절산화하여 얻으며 축전지판의 제조에 사용한다.
- (45)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기화합물인 디비닐벤젠 이성체(isomers)**(통상 25%부터 80%까지)와 에틸비닐벤젠 이성체(통상 19%부터 50%까지)의 혼합물 : 디비닐벤젠 이성체만이 가교결합 공정에 참여하는 폴리스티렌 수지용의 중합제로 사용한다.
- (46) **연마성 스톱 제조용의 점결제(binder)로 사용하거나 화학제조용의 시커너(thickeners)와 에멀전(emulsion) 안정제로 사용하는 혼합물** : 제25류의 서로 같은 호나 서로 다른 호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류에 분류하는 물질과 다음의 복합물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여러 가지 점토의 혼합물 ;
 - 여러 가지 점토와 장석(長石 : feldspar)의 혼합물 ;
 - 점토·가루 장석과 가루화한 천연붕사[팅컬(tincal)]의 혼합물 ;
 - 점토·장석과 규산나트륨의 혼합물
- (47)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하는 혼합물** : 제25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흙·모래·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인·칼륨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 단, 이탄과 모래나 점토의 혼합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이탄(peat)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703호).

(48) **젤라틴을 기본 재료로 한 복사용 페이스트(paste)** : 설계도의 복사·인쇄기롤러 도포 등에서 사용한다. 이들 페이스트(paste)의 성분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젤라틴이며 여기에 덱스트린(dextrin)과 황산바륨이나(그 페이스트가 인쇄기용 잉크롤러 제조용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글리세롤이나 설탕과 충전제(고령토 등) 등이 서로 다른 비율로 첨가된다.

이들 페이스트는 벌크 모양(박스·드럼 등)이나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보통 종이나 직물 지지제 위에)로 제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복사용 페이스트로 도포된 인쇄기용 잉크롤러는 제외한다(제8443호).

(49) **모노-와 디-글리세리드디아세틸타르타르산 에스테르** : 인산삼칼슘이나 탄산칼슘이 혼합된 것으로 유화제(emulsifier)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실리콘·페로실리콘과 지르코니아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수집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실리카 폼(silica fume)으로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concrete)·섬유 시멘트(fibre cement)나 캐스터블 내화물(refractory castable)에서 포졸란(pozzolan) 첨가제로, 폴리머(polymer)에서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제2811호)
- (b) 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완성가공제와 그 밖의 물품이나 조제품(제3809호)
- (c) 제6806호의 단열용·방음용·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제6812호의 석면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소호해설]

소호 제3824.89호

짧은사슬 염화과라핀을 함유하는 혼합물의 교역은 「로테르담 협약」과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통제된다.

소호 제3824.91호

소호 제3824.91호에 기술된 혼합물과 조제품의 교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따라 통제된다.

소호 제3824.92호

메틸포스포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교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따라 통제된다.

38.25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 3825.10 - 생활폐기물
- 3825.20 - 하수 찌꺼기
- 3825.30 - 감염성 폐기물
 - 폐유기용제
- 3825.41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 3825.49 -- 기타
- 3825.5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 3825.61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 3825.69 -- 기타
- 3825.90 - 기타

(A)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 (1) **알칼리산화철** : 가스(특히, 석탄가스) 정제용의 것으로서 불순한 제2산화철을 함유하고 있다.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하나의 공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탄산나트륨·실리카 등을 함유하고 있다.
- (2) **항생물질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잔재물**["케이크(cake)"라고 한다]로서 소량의 항생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배합사료의 조제에 적합한 물품
- (3) **암모니아성 가스액** : 석탄가스로부터 응축된 조(粗 : crude) 콜타르를 침강시킨 수층부분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또한 석탄 세정용수 내 암모니아의 흡수를 통해서도 얻어진다. 보통 수송 전에 농축하며 갈색의 액체로서 암모늄염(특히 황산암모니아)과 순수하고 농축된 암모니아 가스 수용액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 (4) **폐산화물(spent oxide)** : 함유된 암모니아의 대부분을 물로 추출 제거시킨 후에 석탄가스는 보통 소철광(沼鐵鑛 : bog iron ore)·수화된 제Ⅲ염화철·톱밥(sawdust)과 황산칼슘으로 조성된 매스(mass)를 통과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정제된다. 이 매스는 석탄가스로부터 특정 불순물(황화수소·시안화수소산 등)을 제거한다. 사용한 후에는 황·감청(Prussian blue)·소량의 암모니아염과 그 밖의 물질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수화산화철로 호칭된다. 보통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이며 색상은 녹색이나 갈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주로 황과 시안화물[특히 감청(Prussian blue)]의 원료·비료·살충제로 사용한다.

- (5) **발전소 연소가스 방출 과정으로부터의 잔재물** : 소위 석회암 석고 연도(煙道 : flue) 가스 탈황화(Limestone Gypsum Flue Gas Desulphurisation : LG FGD)에 의한 잔재물이다. 이 잔재물은 고체이거나 슬러리(slurry)의 형태이고 추가적으로 가공될 수 있으며 플라스터(plaster) 보드 제조에 있어서 천연 석고의 대용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재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황산칼슘은 **포함되지 않는다(제2833호)**.

(B) 생활폐기물

또한 이 호에는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종류의 쓰레기·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쓰레기와 해체 쓰레기를 말한다.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을 포함한다.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예: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과 폐전지의 폐기물)과 산업용 폐기물은 **제외하며** 이 표의 적당한 호에 분류한다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D) 참조]. 또한 그렇게 별도로 수거된 폐기된 재료나 폐기된 제품은 이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C) 하수 찌꺼기

하수 찌꺼기(sewage sludge) :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前)처리된 폐기물·오물과 안정화 되지 않은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제31류**의 비료로 사용하는 안정화된 찌꺼기를 **제외한다**. 단, 비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안정화된 찌꺼기로 농사에 유해한 그 밖의 물질(예: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D) 이 류의 주 제6호의 열거한 그 밖의 폐기물

이 호에는 또한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열거한 다양한 종류의 그 밖의 폐기물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감염성 폐기물(clinical waste)** : 의학연구·검진·치료나 그 밖의 내과·외과·치과나 수의과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폐기물. 이러한 폐기물은 종종 병원균·의약품질과 체액을 함유하므로 특수처리과정이 필요하다(예: 오염된 붕대, 사용한 장갑과 주사기).
- (2) **폐(廢 : waste)유기용제** : 보통 세탁과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제시된 상태에서 본래의 제품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용제(solvent)의 재생용으로 의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를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waste)은 **제외한다(제2710호)**.

- (3) **금속 세정액·유압액(hydraulic fluid)·브레이크액과 부동(不凍 : anti-freezing)액 폐기물 :**
제시된 상태에서 본래의 제품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본래의 물품의 재생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는 금속이나 금속화합물의 재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금속 세정액의 폐기물로부터 얻어지는 회(灰 : ash)와 잔재물(제2620호)과 주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고 있는 유압액과 브레이크액(제2710호)은 제외한다.

- (4)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 이 그룹은 특히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폐유기용제(溶劑) 이외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성(水性)이나 비수성(非水性) 매체의 용액이나 반(半)고체 상태의 분산물(dispersion)로부터 얻어지는 각양각색의 불균질한 혼합물이며, 다양한 점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제시된 상태에서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 호에는 금속이나 그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waste)의 슬래그(slag)·회(灰)와 잔재물(제2620호)과 주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웨이스트(제2710호)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금속·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슬래그(slag)·회(灰 : ash)와 잔재물로서 비소나 금속의 회수용이나 이들의 화합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제2620호)
- (b)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
- (c)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terpen)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terpenic) 부산물(제3301호)
- (d) 우드 펄프(wood pulp)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 residual lye) (제3804호)

38.26 -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바이오디젤(biodiesel)은 다양한 사슬 길이의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물에 섞이지 않으며, 높은 끓는점·낮은 증기압·석유에서 생산된 디젤유와 비슷한 점도를 지닌다)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오디젤은 전형적으로 에스테르 결합전이반응(transesterification)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기름(油 : oil)과 지방(脂 : fat) 상태의 지방산이 촉매를 통해 알코올(보통의 경우 메탄올이나 에탄올)과 반응하여 의도된 에스테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식물성 기름(油)[예: 유채씨·대두·종려나무·해바라기·목화씨·야트로파(jatropha)]·동물성 지방(脂)[예: 라드(lard)·텔로우(tallow)]나 사용한 기름이나 지방[예: 튀김 기름·재활용 요리용 그리스(grease)]로부터 얻어진다.

바이오디젤은 그 자체로는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으나 석유나 역청(瀝靑)질의 광물로부터 얻어지는 증류 연료(예: 디젤·등유·난방용 기름)와 혼합될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압축 점화식의 내연기관피스톤 엔진·열에너지 생산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를 위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전 중량의 70%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제2710호**)
- (b) 식물성 기름(油)(산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지방족 탄화수소 사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얻어진 물품(**제2710호**)

38.27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 3827.11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827.12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 3827.13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 3827.14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 3827.2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827.31 --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
- 3827.32 --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3827.39 -- 기타
- 3827.40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이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이나 과불화탄소(PFCs)를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827.51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 함유한 것
- 3827.59 -- 기타
 - 그 밖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827.61 --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을 질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한 것
- 3827.62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55% 이상 함유하지만,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827.63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4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3827.64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을 질량 기준으로 30% 이상 함유하지만,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827.65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디플루오로메탄(HFC-32)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하고,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부
38.27

3827.68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
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827.69 -- 기타

3827.90 - 기타

이 호에는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분류하며, 이러한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도 포함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과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

제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
하는 물품이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 나. 동시에 제시한 것
 -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총설

부주 제1호 :

이 주는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제7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분류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 주의 규정은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세트로 한정한다. 이와 같은 세트 물품은 동세트의 구성요소가 해당 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를 세트로 포장한 물품(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제7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사전에 혼합하지 않고 차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이러한 물품을 통칙[일반적으로 통칙제3호나목]에 의하여 분류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해당 구성요소는 각각 별개로 분류한다.

부주 제2호 :

제3918호(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와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와 제3919호(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등)의 물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나 그림을 인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49류에 해당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7부에 해당되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든 그 밖의 다른 모든 물품이 그 물품에 되어 있는 인쇄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인쇄용 매체(medium)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물품은 제49류에 분류한다.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구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크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2710호나 제3403호의 조제 윤활유
 - 나. 제2712호나 제3404호의 왁스
 - 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 라.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 마.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 바.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
 - 사. 런검(run gum)이나 에스테르검(ester gum)(제3806호)
 - 아.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의 것(제3811호)]
 - 자. 폴리글리콜·실리콘이나 그 밖의 제39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유압액(제3819호)
 - 차.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실험용 시약을 붙인 것(제3822호)
 - 카. 제40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
 - 타.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 파. 제46류의 조물·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이나 그 밖의 물품
 - 하. 제4814호의 벽 피복재
 - 거.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너. 제12부의 물품(예: 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체찍·승마용 체찍과 이들의 부분품)
 - 더.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 러.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
 - 머.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
 - 버.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
 - 서.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 어. 제92류의 물품(예: 악기류나 이들의 부분품)
 -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단추·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빗·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진공플라스크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제3902호)
 -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텐계 수지(제3911호)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 마.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
4.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래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래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물당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제7부
제39류

7.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8.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
9.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grain)장식·엠보싱(embossing)장식·착색·디자인인쇄나 그 밖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관·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관·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 가.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구조물의 구성요소
 -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 라.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
 - 바.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과 연결구류
 -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 대형선반(예: 상점용·작업장용·창고용)
 - 아. 장식용 건축물[예: 플루팅(fluting)·둥근 지붕·비둘기장]
 - 자. 건물의 문·창·계단·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장착구와 부착구[예: 노브(knob)·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switch-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



소호주:

1.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 소호 제3901.30호·제3901.4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
- 3)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해당 물품이 다른 소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로 분류한다.
- 4) 위의 1)·2)·3)에 해당하지 않는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나.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 1)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 2)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의 적절한 소호로 분류한다.

※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2. 소호 제3920.43호에서 “가소제”에는 2차 가소제를 포함한다.

총설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합체(polymer)

중합체(polymer)는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성인 분자로 조성된다.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러 분자의 반응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polymerisation)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중합에는 다음에 열거된 주요한 유형의 반응을 포함한다.

- (1) **부가중합(addition polymerisation)** : 불포화에틸렌을 가지고 있는 단일의 분자가 단순 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탄소-탄소결합만을 함유하는 중합체 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으로부터 폴리에틸렌 생성,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로부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때로는 단순중합이나 단순공중합, 즉 엄격한 의미의 중합이나 공중합이라고 부른다.
- (2) **재배열중합(rearrangement polymerisation)** : 산소·질소·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분자 내의 전위와 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에테르(ether)결합·아미드(amide)결합·우레탄(urethane)결합이나 그 밖의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포름알데히드로부터 폴리(옥시메틸렌)(폴리포름알데히드), 카프로락탐으로부터 폴리아미드-6, 폴리올(polyol)과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로부터 폴리우레탄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중부가(polyaddition)라고 하기도 한다.
- (3) **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sation)** : 산소·질소·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진 분자가 축합반응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생성하면서 에테르(ether)결합·에스테르(ester)결합·아미드(amide)결합이나 그 밖의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 글리콜과 테레프탈릭산으로부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생성, 헥사메틸렌디아민과 아디프산으로부터 폴리아미드-6,6의 생성 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축합(condensation)이나 중축합(polycondensation)이라고도 한다.

중합체는,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염화비닐)의 염소화, 폴리에틸렌의 클로로술폰화(chlorosulphonation), 셀룰로오스(cellulose)의 아세틸화(acetylation)와 니트로화(nitration), 폴리(초산비닐)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와 같이 화학적으로 변성하기도 한다.

중합체에 대한 약어

이 류의 많은 중합체들은 약어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다음 일람표는 보다 흔히 사용하는 약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共重合體)
CA	초산셀룰로오스
CAB	초산셀룰로오스 부티레이트
CP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CMC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PE	염소화 폴리에틸렌
EVA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DMS	폴리디메틸실록산
PE	폴리에틸렌
PEOX	폴리(에틸렌 옥사이드)(폴리옥시에틸렌)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IB	폴리이소부틸렌
PMMA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P	폴리프로필렌
PPO	폴리(페닐린 옥사이드)
PPOX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폴리옥시프로필렌)
PPS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S	폴리스티렌
PTFE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PVAC	폴리(초산비닐)
PVAL	폴리(비닐 알코올)
PVB	폴리(비닐 부티랄)
PVC	폴리(염화비닐)
PVDF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PVP	폴리(비닐 피로리돈)
SAN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共重合體)

상거래 관습상의 중합체는 이들의 약어로 나타낸 것 보다는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를 더 많이 의미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예: 본질적으로 에틸렌의 중합체인 선형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소량의(때로는 5%) 알파-올레핀 단량체(單量體)단위를 함유하고 있다]. 더욱이 중합체의 적정한 단량체(單量體)량은 약어로 표시한 해당 중합체와 같은 배열순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예: 아크릴로 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는 가장 우세한 단량체(單量體) 단위로서 스티렌(styrene)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합체 약어는 오직 지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품목분류는 관련 류의 주와 소호주의 적용과 중합체의 단량체(單量體) 비교 조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이 류의 주 제4호와 소호주 제1호 참조).

플라스틱

“플라스틱(plastic)”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방법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가압, 필요할 때에는 용제(溶劑 : solvent)나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가한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크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도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간주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플라스틱(plastic)”이라는 정의는 이 표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합(polymerisation)”이라는 용어는 본 규정에서 광의로 사용하며, 부가중합(addition polymerisation), 재배열중합(rearrangement polymerisation)(중부가)과 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sation)(중축합)을 포함한 중합체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의미한다.

이 류의 물질이 가열처리로 반복적으로 연화하여 제품으로 형성된 다음(예: 몰딩에 의한 것) 냉각처리로 경화되는 경우, 이 물질을 “열가소성(thermoplastic)”이라고 칭하며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방법(예: 가열)에 의하여 불용해성의 제품으로 변형하는 경우 이를 “열경화성(thermosetting)”이라 부른다.

플라스틱은 거의 무한의 용도를 가지고 있으나 제39류 이외의 류에 분류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도 많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이 류의 전반적 배열

이 류는 두 개의 절로 구분된다. 제1절은 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 중합체를 분류하고, 제2절은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과 스크랩(scrap), 반제품과 제품(article)을 분류한다.

일차제품(primary form)인 제1절의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의 물품은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하며 제3912호와 제3913호의 물품은 천연 중합체 상태의 것이거나 천연중합체를 화학적인 처리로 제조한 것이다. 제3914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이온 교환수지(ion-exchanger)를 분류한다.

제2절의 제3915호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과 스크랩(scrap)에 관한 것이며 제3916호부터 제3925호까지는 플라스틱제의 반제품이나 특정의 완제품을 분류한다. 제3926호는 잔여호(residual heading)로서, 플라스틱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제품을 분류한다.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의 범위

이들 호의 범위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화학적인 합성에 의하여 제조되는 종류의 물품만을 적용한다.

- (가)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 : 이들은 에틸렌·프로펜·부텐·그 밖의 올레핀으로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제3901호나 제3902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이들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감압증류법(reduced-pressure distillation)에 의하여 증류할 경우에 1,013 밀리바로 환산한 때의 온도 섭씨 300도에서 유출용량이 전용량의 6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쿠마론-인덴(coumarone-indene)계의 수지** : 콜 타르(coal tar)에서 유도된 혼합 단량체(單量體 : monomer)[쿠마론(coumarone)이나 인덴(indene)을 포함한다]가 공중합에 의하여 제조된 고중합체가 아닌 것에 한정한다(제3911호).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연속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는 것) : 여기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 류의 주 제3호다목에 따라 평균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 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합축합체와 특정 재배열 중합체는 각기 서로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중합과정에 있어서 단일 단량체(單量體) 분자에 의한 최대 구성요소이지만 중합체 조성 상에 반복되는 단위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해당 반복단위는 반복에 의하여 중합체를 특정짓는 최소의 중합체 구성단위이지만 중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일분자로서의 개념인 단량체(單量體)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중합체가 96%의 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單量體) 단위와 4%의 그 밖의 올레핀(olefin)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이루어진 하나의 중합체는 공중합체(共重合體)로 간주하지 않는다.

공중합체(共重合體)는 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 공중합체(共重合體)와 그래프트 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

블록 공중합체(共重合體)(block copolymer) : 서로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구성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2개의 연결된 중합체 배열로 구성된 공중합체(共重合體)를 말한다[예: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교류부분을 포함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

그래프트 공중합체(共重合體)(graft copolymer) : 서로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구성을 가진 측면 중합체 사슬을 포함하고 있는 주중합체로 구성된 공중합체(共重合體)를 말한다. 예: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共重合體)-그래프트(*graft*)-폴리스티렌(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共重合體)에 그래프트된 폴리스티렌)과 폴리부타디엔-그래프트(*graft*)-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共重合體)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와 그래프트 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혼합 중합체는 이 류의 주 제4호에 의해 분류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물품은 이들을 구성하는 공단량체(共單量體 : comonomer)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共單量體)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를 구성하는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을 합계하여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로 간주한다.

만약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 comonomer) 단위[동일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그룹]가 없을 경우에는 공단량체(共單量體)나 혼합 공중합체(共重合體)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염화비닐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55% 함유하고 있는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제3904호에 해당하고 초산비닐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55% 함유하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제3905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45% 에틸렌, 35% 프로필렌과 20%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는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제3902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과 이소부틸렌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는(이들의 중합체는 제3902호에 해당된다)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계할 경우 에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 중량이 많기 때문이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와 하나의 폴리에테르 폴리올(polyether polyol)을 기본 재료로 한 55% 폴리우레탄과 45% 폴리(옥시크실릴렌)로 조성된 혼합 중합체는 폴리우레탄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양이 폴리(옥시크실릴렌) 폴리에테르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많으므로 제3909호에 분류한다. 폴리우레탄을 규정하는 문맥에서 모든 폴리우레탄 단량체(單量體) 단위[폴리우레탄의 일부 형태로서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단량체(單量體)를 포함한다]는 합계하여 제3909호에 분류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chemically modified polymer)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5호 참조). 다만, 이 규정은 그래프트 공중합체(共重合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클로로화(chlorinated) 폴리에틸렌과 클로로 술폰화(chlorosulphonated) 폴리에틸렌은 제3901호에 분류한다.

중합체가 에폭시수지가 되는 것과 같이 화학적으로 변성하여 반응성 에폭시 그룹을 형성하는 중합체(제3907호 해설 참조)는 제3907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에 의하여 화학적으로 변성된 페놀수지는 에폭시수지로 분류하지만 화학적으로 변성하지 않은 페놀수지는 제3909호에 분류한다.

구성성분 중 한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성된 혼합 중합체는 전체가 화학적으로 변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차제품(primary form)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는 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 물품만을 분류한다. “일차제품(primary form)”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전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 · 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 · 안정제 · 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체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것은 주형 · 압출성형 등에 사용하며 칩투제 · 표면도포제 · 바니시(vernish)와 페인트의 기본 재료와 글루(glue) · 농축제 · 영김제 등으로도 사용한다.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물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한다**.

(a) 조제된 글루(glue)(이 류의 총설 제외 규정(b) 참조)

(b) 광유(mineral oil)용 조제 첨가제(제3811호)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 열거된 어떤 특정 물품이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된 용액[콜로디온(colloid)은 **제외한다**]으로서 용제(溶劑 : solvent)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하여 제3208호**에 분류한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2호마목 참조).

용제(溶劑)가 없는 액체 상태의 중합체로서 오로지 바니시(vernish)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하지 않았지만, 열에 의해서 대기수분(습기)이나 산소에 의해서 필름을 형성한다]은 **제3210호**로 분류하며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류에 해당된다.

매스틱(mastic)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additive)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제품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

- (2) **가루(powder) · 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flake)** :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ernish) · 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 · 영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 · 셀룰로오스(cellulose) · 방직용 섬유 · 광물성 물질 · 전분] · 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가루 모양의 것은 열을 사용하여 정전기(static electricity)현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고 목적물을 도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3) **블록(불규칙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 덩어리(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 충전제 · 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보지 않고 “플레이트(plate) · 시트(sheet) · 필름(film) · 박(foil)과 스트립(strip)”에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0호 참조).

일차제품의 모양(primary form)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재료로 된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s)과 스크랩(scrap)은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분류하며(재료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것은 제3915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관 · 파이프와 호스

제3917호의 “관 · 파이프와 호스(tube, pipe and hose)”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8호에 규정하고 있다.

제3920호나 제3921호의 판 · 시트 · 필름 · 박(箔)과 스트립

제3920호와 제3921호의 “판 · 시트 · 필름 · 박과 스트립(plate, sheet, film, foil and strip)”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다.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 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끈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 · 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 제3919호 ·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은 덩어리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이나 두 가지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발포플라스틱(foam plastic) · 팽창플라스틱(expanded plastic) · 마이크로포러스(microporous)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들에는 연질(軟質 : flexible)과 경질(硬質 : rigid)의 것이 있다.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중에는 플라스틱에 가스를 혼합시키는 방법(예: 기계적 혼합, 끓는점이 낮은 용매의 기화와 가스 생성 물질의 분해), 중공(中空 : hollow)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예: 유리나 페놀 수지의 것)를 플라스틱에 혼합하는 방법, 플라스틱의 미립자를 소결하는 방법과 플라스틱에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에 녹는 물질을 혼합하여 이것들을 제거하여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포함한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이 류의 주 제9호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의 주 제1호아목,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한다.

- (a)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felt) ;
-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 ;
-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시트·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과일직물, 툴(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 (a)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은 보호 시트(sheet)로 피복한 종이나 판지물품은 종이나 판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

- (c)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와 종이나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한 물품이나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앞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막대(rod)·스틱(stick)·형재(型材 : profile shape)·관(tube)·파이프(pipe)·호스(hose)와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비금속(非金屬 : base metal)의 거즈(gauze)와 망(netting)이 단순히 플라스틱 용액에 살짝 잠긴 것은 침적(浸漬 : dipped) 공정으로 망목(meshe)이 충전되었다 하여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5부**).

제7부
제39류

목재와 플라스틱을 겹쳐서 만든 판(plate)이나 시트(sheet)로서 목재가 단지 플라스틱의 지지 용이나 보강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플라스틱이 단지 **보조적** 역할(예: 고급 합판용 기본 재료를 형성할 때)을 할 때에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44류)**. 이와 관련하여 목재와 플라스틱 층으로 만든 건축용 패널(panel)은 대개 제44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44류 총설 참조).

*
* *

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규정 이외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플라스틱에 착색제를 농축 분산한 것으로서 **제3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 있는 것 ; 예: 다음 각 호를 참조할 것. (1) **제3204호** 해설 I (C)항[플라스틱에 착색제를 농축(농(濃)) 분산시킨 것]. (2) **제3204호** 해설 II(2)항[플라스틱 재료에 유기 루미노퍼(luminophore)(예: rhodamine B)를 분산시킨 것]. (3) **제3205호** 해설 제7항(플라스틱에 레이크 안료를 농축 분산시킨 것). (4) **제3206호** 해설(A) (6)항 (I) (플라스틱에 그 밖의 착색제를 농축 분산시킨 것).
- (b)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조제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 또는 중합체혼합물로 된 조제품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분류하는 물품에 허용되는 첨가제(예: 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를 **제외하고** 이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첨가 물질(예: 왁스)을 함유하고 있다]과 글루나 접착제로서 소매포장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순중량 1kg 이하의 물품)(**제3506호**)
- (c)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으로서(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나 그림을 인쇄한 것(**제49류**)

○
○ ○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이 주에서는 소호 레벨의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다만, 이들 물품의 분류에 앞서 이 류의 주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적절한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이 류 총설 참조).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

소호주 제1호에 따라서,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소호의 동일 계열에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소호주 가목이나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소호 “기타(Other)”에는 예를 들면,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Other polyester)”와 “그 밖의 플라스틱 것(Of other plastic)”과 같은 소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계열에(in the same series)”라는 표현은 동일 레벨의 소호 즉 원-대쉬 소호(레벨1)나 투-대쉬 소호(레벨2)에 대해 적용한다(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 해설 참조)

일부 소호(예: 제3907호)에는 두 가지의 소호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의 분류

- (1) **소호주 제1호가목(1)**에는 접두사 “폴리(poly)”(예: 폴리에틸렌과 폴리아미드 - 6, 6)가 있는 중합체에 대해 해당 중합체의 조성 단량체(單量體)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접두사 “폴리(poly)”(예: 소호 제3911.10호에 폴리에테르핀)가 있는 중합체 종류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모든 단량체(單量體) 단위[예: 폴리에테르핀의 경우에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 함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정은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소호들의 중합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96% 에틸렌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와 4%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중합체로서 비중 0.94 이상(이 류의 주 제4호의 적용에 따라 제3901호의 중합체인 것)의 것은 에틸렌 단량체(單量體)가 전 중합체 함유량의 95% 이상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계열에 “기타(Other)”라는 소호가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호 제3901.20호의 폴리에틸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접두사 “폴리(poly)”를 갖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해 적용할 경우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전 중량의 95% 이상이 “비닐 알코올(vinyl alcohol)”로 명명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초산비닐과 비닐알코올의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합계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임을 나타내는 것은 필요하다.

- (2) **소호주 제1호가목(2)**에서는 소호 제3901.30호, 제3901.40호, 제3903.20호, 제3903.30호와 제3904.30호 해당 물품의 분류를 다룬다.

이들 4개의 소호에 분류하는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는 해당 소호에 명명된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전 중량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1% 염화비닐, 35% 초산비닐과 4% 말레익(maleic) 안하이드라이드(anhydride) 단량체(單量體) 단위(제3904호의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소호 제3904.30호의 염화비닐-초산 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합계가 전 중합체 함유량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60% 스티렌, 30% 아크릴로니트릴과 10% 비닐톨루엔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3호의 중합체)는 소호 제3903.90(기타)호에 분류하며 소호 제3903.20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티렌과 아크릴로니트릴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합계가 전중합체 함유량의 90%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3) **소호주 제1호가목(3)**에서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를 다룬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가 다른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한다.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 자체가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같은 소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의 결론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3901호의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인 클로로화(chlorinated)나 클로로설폰화(chlorosulphonated) 폴리에틸렌은 소호 제3901.90호(기타)에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폴리(초산비닐)를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해서 얻어지는 폴리(비닐알코올)은 이를 열거한 소호 제3905.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4) **소호주 제1호가목(4)**에서는 소호주 제1호가목(1), 가목(2), 가목(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중합체는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한다. 다만, 그 밖의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에 비해서 중량이 가장 많은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가 **고려대상 계열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분류에 있어서 동일소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의 계열에 있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이 비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열거된 소호의 본문에는 “x의 중합체(polymer of x)” “x공중합체(共重合體)(x copolymer)”, “x 중합체(x polymer)”형을 가지고 있다[예: 프로필렌(propylene) 공중합체(共重合體)(소호 제3902.30호), 플루오르(fluoro) 중합체(소호 제3904.61호와 제3904.69호)].

이들 소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호에 표기된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고려 대상의 계열에 있는 그 밖의 다른 단일의 단량체보다 양적으로 우세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소호에 표기된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고려대상 계열의 해당 중합체 전 함유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40% 에틸렌과 60% 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에틸렌(ethylene)-프로필렌(propylene)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 중합체인 것)는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로서 소호 제3902.3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45% 에틸렌(ethylene), 35% 프로필렌(propylene)과 20%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는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의 중합체인 것)는 소호 제3902.3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과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하게 되며[에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무시한다]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편, 45% 에틸렌, 35% 이소부틸렌과 20%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의 중합체인 것)는 소호 제3902.9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하게 되며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나)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의 분류

- (1) 소호주 제1호나목(1)에서는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의 단량체(單量體)보다 중량이 우세한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된 중합체에 대해 소호로 분류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동일소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합계한다.

이는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 이 류의 주 제4호의 분류 방법과 유사하다.

중합체가 고려 중인 소호의 계열 외부에 해당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개의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우세개념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고려 중인 소호의 계열에 있는 중합체와 관련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요소(urea)·페놀(phenol)과 포름알데히드(제3909호의 중합체인 것)와의 공중축합체는 단일 요소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페놀(phenol)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9.10호에 분류하고 페놀(phenol)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3909.4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소호의 동일 계열에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가 없기 때문이다.

접두사 “폴리(poly)”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소호주 제1호 가목1)의 정의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소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모두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가지는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소호의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61호나 제3907.69호에 분류한다.

- (2) 소호주 제1호나목 (2)에서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를 다룬다. 이들은 고려 중인 소호의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없을 때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와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세틸화페놀수지(제3909호의 중합체이다)는 동일 계열에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9.40호 페놀수지로 분류한다.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의 분류

소호주 제1호의 마지막 단락은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이들 혼합 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 단량체(單量體)로 된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에 분류한다.

다음의 예는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 96% 폴리에틸렌과 4%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 비중 0.94를 초과하는 혼합 중합체는 소호 제3901.2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에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해당 중합체 함유량의 9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60% 폴리아미드-6과 40%의 폴리아미드-6,6으로 구성되는 혼합 중합체는 해당 혼합 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8.90(“기타(Other)”)호에 분류한다.
- 폴리프로필렌(45%),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42%)와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13%)의 혼합물은 2개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보다 우세하므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해당 혼합물의 개개 중합체에서 이들 단량체(單量體)단위가 얼마나 결합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로써,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와 또 다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와 **동일한** 단량체(單量體)단위이다. 다만,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 고려할 경우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other polyester)”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정확한 화학량론(化學量論 : stoichiometric) 비율에 있어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해당 혼합물은 소호 제3907.99호에 분류한다.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제3901호 - 제3914호)

39.01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3901.2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901.3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3901.4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3901.90 - 기타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과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과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 단량체(單量體)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와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도 분류한다[중합체(公중합體)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폴리에틸렌은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반투명의 물질이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 low-density polyethylene) 즉, 섭씨 20°C에서 비중 0.94 미만(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의 폴리에틸렌은 특히 식품의 포장필름용으로, 종이·섬유관·알루미늄호일 등의 도포용으로, 전기절연용·가구·완구 등의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고밀도의 폴리에틸렌(HDPE : high-density polyethylene)은 섭씨 20°C에서는 비중 0.94 이상(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인 폴리에틸렌이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여러 가지의 흡입성형(blow-moulded)과 사출성형제품·직물자루·가솔린과 오일컨테이너의 제조와 파이프 등의 압출성형에 사용한다.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의 용도에는 스냅온(snap-on)방식의 캡·백인박스(bag-in-box) 컨테이너 라이닝(lining)과 신축포장용 라이닝(lining)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그 밖의 공중합체[플라스토머(plastomer)]뿐만 아니라 선형의 저밀도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LLDPE)도 포함하는데, 이들은 비중(比重)이 0.94 미만이고 알파-올레핀 단량체(單量體 : comonomer)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이고 50% 미만인 것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 류의 주 제3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액체 모양의 합성폴리올레핀(**제2710호**)

(b) 폴리에틸렌 왁스(**제3404호**)

39.02 -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3902.10 - 폴리프로필렌
- 3902.20 - 폴리이소부틸렌
- 3902.30 - 프로필렌 공중합체
- 3902.90 - 기타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공중합체(共重合體)·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성질과 유사하다.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도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장용 필름·자동차·기기·가정용품 등의 성형 부분품·금속선과 케이블의 도포·식품 용기의 마개·도포·적층 물품·병·정밀저장 설비용의 트레이·용기·도관·탱크라이닝(tank lining)·화학공장의 배관·터후트한(tufted) 카펫의 이면재(backing) 등이 있다.

충분히 중합된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은 고무와 흡사하나, 합성고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40류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폴리이소부틸렌은 방수도포와 그 밖의 플라스틱 변성용으로 사용한다.

약간 중합한 것으로서 이 류의 주 제3호가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폴리이소부틸렌도 이 호에 포함되며 점성의 것은 윤활유의 성질을 변성시키는데 사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3호가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액체 모양의 합성폴리이소부틸렌이나 그 밖 액체 상태의 합성 폴리올레핀은 **제외한다(제2710호)**.

39.03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폴리스티렌

3903.11 -- 발포성의 것

3903.19 -- 기타

3903.2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3903.3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3903.90 - 기타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스티렌(styrene) -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共重合體)·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butadiene) - 스티렌(styrene)(ABS) 공중합체(共重合體)와 스티렌 - 부타디엔 공중합체(共重合體)이다. 상당량의 부타디엔(butadiene)을 함유한 대부분의 스티렌(styrene) - 부타디엔(butadiene)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제40류의 주 제4호의 조건에 부합하므로 **제40류**의 합성고무에 분류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불팽창성 폴리스티렌(unexpanded polystyrene)은 무색투명한 열가소성 물질로서 전기와 라디오 공업에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또한 이것은 예를 들면, 식품과 화장품 포장 등 포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완구·시계 캐비닛·축음기용 레코드판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팽창성(셀룰러) 폴리스티렌(polystyrene)은 팽창공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부피밀도가 낮다. 팽창성 폴리스티렌은 냉장고 문·공기조절기 하우징·냉동고 설비·냉동고 디스플레이 캐비닛의 단열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건설업에서도 사용한다. 또한 1회용 포장재와 식품(한끼분)을 담은 제품으로서도 사용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스티렌(styrene) 공중합체(共重合體)의 어떤 것은 이온교환 수지(ion-exchanger)이다 (**제3914호**).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共重合體)는 높은 인장 강도·양호한 성형성과 화학적 저항성이 있어 컵·텀블러·타자기 열쇠·냉장고 부분품·오일필터볼(oil-filter bowl)·특정 주방설비품 제조에 사용한다. 높은 내충격성과 내후성(耐朽性 : weather resistance)을 가지고 있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공중합체(共重合體)는 차체(coachwork)의 부분품·부속품·냉장고 문·전화기·병·구두 뒷굽(heel)·기계류의 케이스·급수관·건축용 패널·선박 등의 부속품과 부분품 제조에 사용한다.

39.04 -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3904.10 -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 3904.21 -- 가소화하지 않은 것
- 3904.22 -- 가소화한 것
- 3904.3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 3904.4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 3904.5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 플루오로 중합체
- 3904.61 --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 3904.69 -- 기타
- 3904.90 - 기타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염화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염화비닐리덴 중합체·플루오르(fluoro)중합체와 그 밖의 할로겐 올레핀(halogenated olefin)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PVC는 가열하였을 경우 한계열안정성(limited heat stability)과 금속표면에 접촉하는 성질을 가진 단단하고 무색의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염화비닐수지를 가소성 성질로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제·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증량제·충전제 등을 가끔 첨가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의 시트(sheet) 모양으로 된 PVC는 커튼·앞치마·레인코트 등의 방수재료와 가구 제조용의 고급모조 가죽과 여러 가지 승객 수송수단의 실내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경질(硬質: rigid)의 PVC 시트(sheet)의 용도는 커버류·덕트(duct)·탱크 라이닝과 화학공장 설비의 그 밖의 수많은 물품의 제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VC 바닥 타일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염화비닐의 공중합체(共重合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음기 음반과 바닥갈개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이다.

염화비닐리덴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주로 식품 포장용·덧개·파이버(fibre)·브리슬(bristle)과 라텍스 코팅용과 화학처리공정설비 파이프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PTFE)은 플루오르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전기·화학·토목공업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높은 작업온도에 견디는 이유로 절연재료로서 우수하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으로 거의 파괴되는 일이 없다.

그 밖의 플루오르(fluoro) 중합체에는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등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39.05 -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폴리(초산비닐)

3905.12 -- 물에 분산된 것

3905.19 -- 기타

-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 물에 분산된 것

3905.29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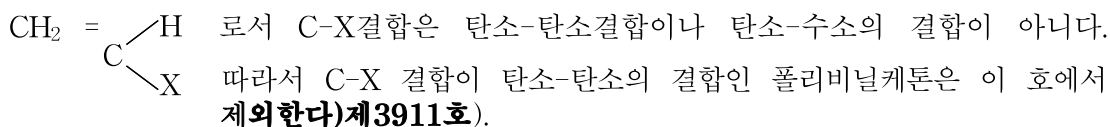
3905.3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기타

3905.91 -- 공중합체(共重合體)

3905.99 -- 기타

이 호에는 **제3904호**의 중합체 **이외의** 모든 비닐중합체를 분류한다. 비닐중합체의 단량체(單量體)의 화학식은



초산비닐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vinyl ester)의 중합체[이 중 폴리(초산비닐)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나친 유연성과 탄력성으로 인해 제품의 제조에는 적합하지 않아 주로 래커(lacquer)·페인트·접착제와 직물용의 완성 가공제나 침투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폴리(초산비닐)의 용액과 분산액(에멀전과 서스펜션)은 예를 들면, 접착제 등으로 사용한다.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은 대개 폴리(초산비닐)를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하여 제조된다. 가수분해(加水分解)하지 않은 초산비닐기의 함유량에 따라 여러 가지 등급의 폴리(비닐알코올)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우수한 유화제와 분산제로서 페인트·의약품·화장품에서 보호 콜로이드(colloid)·접착제·결합제와 농축제로 사용하며 직물에서도 사용한다. 폴리(비닐알코올)로 만든 파이버(fibre)는 내의·담요·의류 등의 제조에 적합하다.

폴리비닐 아세탈(polyvinyl acetal)은 폴리(비닐알코올)이 포름알데히드나 부틸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와 반응하거나 폴리(초산비닐)가 알데히드와 반응함으로써 제조된다.

그 밖의 비닐 중합체에는 폴리비닐에테르·폴리(비닐 카르바졸)과 폴리(비닐 피롤리돈)을 포함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

39.06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3906.90 - 기타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중합체이며 광학적인 성질과 물질적 강도가 우수하여 광택 재료로써 옥외 간판과 그 밖의 전시용품의 유약원료와 의안·콘택트렌즈와 의치의 제조에 사용한다.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의 중합체는 합성섬유의 제조에 사용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온교환수지인 아크릴 중합체(**제3914호**)

(b) 제40류의 주 제4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共重合體)(**제40류**)

39.07 - 폴리아세탈수지 ·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 그 밖의 폴리에테르
- 3907.21 --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 3907.29 -- 기타
- 3907.30 - 에폭시수지
- 3907.40 - 폴리카보네이트
- 3907.50 - 알키드수지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3907.61 --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 3907.69 -- 기타
- 3907.70 - 폴리(락트산)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 3907.91 -- 불포화의 것
- 3907.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폴리아세탈(polyacetal)** : 알데히드(보통 포름알데히드)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아세탈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아세탈수지는 아세탈관능기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아세탈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플라스틱족(family of plastic)은 아세탈 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학적 플라스틱으로 취급됨으로써 링 베어링 · 캠 · 자동차 기기용의 하우징(housing) · 문 손잡이 · 펌프 · 공기 임펠러(impeller) · 구두 뒷굽 · 기계식 완구 · 배관 연결구류 등에 사용한다.
-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에폭시 · 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 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 [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 호는 또한 제29류(제1절부터 제10절까지와 제2940호와 제2942호)의 물품이 페그화(pegylated)된 [폴리에틸렌 글리콜(PEGs) 폴리머(polymer)]유도체를 포함한다.

페그화된(pegylated) 물품들 중 페그화되지 않은 형태가 제29류(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와 제2941호)나 제30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의 페그화되지 않은 형태의 것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

(3) **에폭시수지(epoxide resin)** : 에피클로로히드린(1-클로로-2, 3-에폭시프로페인)을 비스페놀A(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노보락(페놀)수지·그 밖의 폴리하이드록시 화합물 등과 축합 반응시키거나 불포화중합체를 에폭시 반응하여 제조하는 중합체이다. 중합체의 기본구조가 무엇이든지간에 이러한 수지는 반응성 에폭시 그룹이 존재하는 것이 특성인 이 반응성 에폭시그룹은 에폭시수지를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아미노화합물·유기산·무수물(無水物)·삼플루오르화 붕소복합체나 유기중합체 등의 첨가에 의하여 교차결합(cross-linking)을 용이하게 한다.

에폭시수지(epoxide resin)는 접착성이 낮은 액체에서 용융성(鎔融性)이 높은 고체에 이르기까지 있으며 ; 표면 도포·접착제·성형용·주조용 수지 등으로 사용한다.

에폭시화한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은 **제1518호**에 분류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이것은 예를 들면, 비스페놀 A와 포스젠(carbonyl chloride)이나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polymer)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carbonic ester-function)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 제조품과 유약 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 용도가 있다.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상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ester function)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에스테르그룹(ester group)이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 에스테르(polyvinyl ester)와 **제3906호**의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와 구별이 된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알키드수지(alkyd resin)** : 다가 알코올·다가 산이나 이들 무수물(無水物)(이들 중 하나는 일부나 전부가 적어도 삼가 이상이다)의 중축합체로서 지방산·동식물성기름·단일 관능기산 알코올·로진(rosin) 등의 그 밖의 물질과 변성한 것이다. 무유(無油)(oil-free) 알키드는 알키드수지(alkyd resin)에 포함하지 않는다[아래(d)항 참조]. 이러한 수지는 주로 도포제와 고급 바니시(varnish)용에 사용하며 보통 점액 상태나 용액 상태로 공급된다.

(b) **폴리아릴에스테르(polyallyl ester)** : 예를 들면, 디알릴 프탈레이트 등의 이가산을 가지고 있는 알릴알코올의 에스테르로부터 유도된 특수 등급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polyester)[“불포화(unsaturated)”에 대해서는 아래 (e)항 참조]를 말한다. 이들 수지는 적층접착제·도포제·바니시와 마이크로 웨이브와 투명도를 필요로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c)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esterified)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 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를 말한다. 직물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용도 이외에 포장 필름·녹음용 테이프·청량음료용 병 등의 용도가 있다. 점도도수(viscosity number)가 78ml/g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병의 제조에 사용한다.

78ml/g 이상의 점도도수는 0.7dl/g 이상의 고유 점도값(intrinsic viscosity value)에 해당한다.

점도도수는 ISO 표준 1628-5에 따라 계산한다.

- (d)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는 또한 **폴리락타이드(poly lactide)**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락트산으로부터 합성이나 발효에 의하여 얻는다[이 방법은 주로 육탄당이나 쉽게 육탄당으로 쪼갤 수 있는 당류나 당밀·사탕무 주스·술파이트 리퀴(sulphite liquors)·유장(乳漿 : whey)이나 전분 같은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락트산은 환식 락타이드 이량체로 변환되고 고리구조는 마지막 중합단계에서 열린다. 방직용 섬유나 포장재료·의료용 재료로 사용한다.
- (e)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불포화 상태이거나 포화 상태일 수 있다.

불포화 에스테르(unsaturated ester)는 불포화에틸렌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ester)이며 이 불포화에틸렌은 열경화성 물품을 형성하는 불포화에틸렌을 함유한 단량체(單量體)와 쉽게 교차 결합할 수 있다(이미 교차결합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불포화 폴리에스테르(unsaturated polyester)에는 예를 들면, 말레산, 푸마르산 등의 불포화산을 기본 재료로 한 폴리아릴에스테르(polyallyl ester)(위의 (b)항 참조)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무유(無油) 알키드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들 수지는 보통 액체 상태의 프리폴리머(p repolymer)로서 주로 유리섬유의 보강 라미네이트와 투명 열경화성(熱硬化性 : thermosetting) 주형물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포화 폴리에스테르(saturated polyester)에는 예를 들면,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테레프탈산을 기본재료로 한 중합체와 포화 무유(無油) 알키드수지를 포함한다. 포화 폴리에스테르는 방직용 섬유와 필름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39.08 -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3908.90 - 기타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linear polyamide)는 나일론(nylon)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아미드는 이가유기산(예: 아디프산·세바스산 등)을 디아민이나 특정의 아미노산(예: 11-aminoundecanoic산)을 중축합하거나 락탐(예: epsilon-caprolactam)의 전위중합으로 얻어진다.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폴리아미드-11·폴리아미드-12·폴리아미드-6,6·폴리아미드-6,9·폴리아미드-6,10과 폴리아미드-6,12이다. 비선형의 폴리아미드의 예로는 이중 합체(dimerised)한 식물성 오일산과 아민의 결합체가 있다.

폴리아미드는 인장강도와 내충격성이 높으며 특히 방향족(芳香族)·지방족 탄화수소·케톤(ketone)·에스테르(ester)에 대하여 화학적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폴리아미드는 방직용 섬유로서의 용도 외에도 폴리아미드는 열가소성(熱可塑性 : thermoplastic) 성형플라스틱과 같은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포제·접착제와 포장용 필름으로도 사용한다.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될 경우 래커(lacquer)로서의 특수용도를 가지고 있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

39.09 -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 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 -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3909.20 - 멜라민수지

- 그 밖의 아미노수지

3909.31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3909.39 -- 기타

3909.40 - 페놀수지

3909.50 - 폴리우레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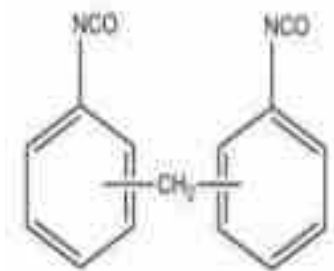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아미노수지(amino-res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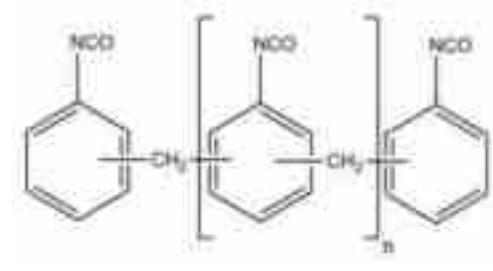
이들은 아민이나 아미드가 알데히드류(포름알데히드 · 푸르푸르알데히드 등)와의 축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수지(예: 요소-포름알데히드) · 티오요소수지(예: 티오요소-포름알데히드) · 멜라민수지(예: 멜라민-포름알데히드)와 아닐린수지(예: 아닐린-포름알데히드)이다.

이들 수지는 투명 · 반(半)투명이나 밝게 착색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책상 · 고급기구 · 전기용품의 성형에 많을 사용한다. 용해된 것과 분산된 것(에멀전과 서스펜션)(오일 · 지방산 · 알코올이나 그 밖의 합성 중합체로 변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글루(glue)와 식물완성제 등으로 사용한다[이 류 총설 제외규정(b)항의 글루(glue)에 대한 품목분류 참조].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중종 “조(粗 : crude) 엠디아이(MDI)” · “중합 엠디아이(MDI)” · 폴리(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고 부른다]는 불투명한 암갈색이나 투명한 옅은 갈색의 액체이며,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에 의해 합성된 폴리(메틸렌 페닐아민) 올리고머가 포스젠과 반응하고 가열되어 유리(遊離 : free) 이소시아네이트 관능기가 만들어진다. 이 물질은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의 화학적으로 변성된 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된 아미노수지)이다. 이 물질은 순수 MDI와 MDI 올리고머 혼합물을 함유한다. 아래의 화학구조 참조.



단량체



MDI 올리고머 MDI(n=1부터 6)

폴리(메틸렌아민)과 같은 폴리아민수지는 아미노수지가 아니므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11호**에 분류한다.

(2) 페놀수지(phenolic resin)

이들 그룹은 페놀(phenol)이나 동족체(크레솔 · 크실레놀 등)나 치환페놀을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푸르푸르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류로 축합하여 얻어진 광범위한 수지 질 물질로 되어 있다. 이들 물질의 성질은 반응이 작용되는 조건과 다른 물질의 도입에 의한 변성 여부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수지(노볼락)** : 알코올이나 그 밖의 유기용제에 영구히 **가용가용(可融可溶 : fusible and soluble)** 되는 수지로서 산(酸)조절 하에 제조되며 바니시와 성형용 가루 등의 조제에 사용한다.
- (b) **열경화성 페놀수지(thermosetting phenolic resin)** : 알칼리 조절로 얻어지며 그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이 얻어진다. 첫째, 레졸(resol)수지 : 액체 모양 · 페이스트(paste) 모양이나 고체 모양이며 바니시(varnish)의 기본 재료 · 침투제 등으로 사용한다. 둘째, 레시톨(resitol)수지 : 성형용 가루 모양이다. 셋째, 레시트(resite)수지 : 완전한 반응을 거친 것으로서 판(plate) · 시트(sheet) · 막대(rod) · 관(tube) · 그 밖의 제품 등 대부분 완성된 모양이며 일반적으로 제3916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
이 종류의 어떤 인조수지는 이온교환체(ion-exchanger)로서 **제3914**호에 해당한다.
- (c) **유용성 페놀수지(oil-soluble phenolic resin)**(건성유에 가용) : 부틸페놀 · 아밀페놀 · 파라히드록시디페닐이나 치환 페놀류에서 제조되며 주로 바니시의 조제에 사용한다.
- (d) 앞에서 설명한 (a) · (b)와 (c)에 열거한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은 로진(rosin)이나 그 밖의 천연 수지 · 합성수지(특히 알키드수지) · 식물성 기름 · 알코올 · 유기산이나 건성유에서의 이들의 가용도(可溶 : solu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화학약품을 결합하여 **변성**한 것이다. 이들 물품은 표면 도포나 침투제로 쓰이는 바니시 · 페인트 조제에 사용한다.

(3)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아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castor oil) · 부탄-1,4-디올(butane-1,4-diol) · 폴리에테르 폴리올 ·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 · 탄성 중합체와 도포제이며 접착제 · 성형 화합물과 섬유로도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컴포넌트(multi-component) 시스템이나 세트(set)의 일부로서 거래된다.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과 미반응 다가 관능기(polyfunctional)인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 ·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

39.1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기(organic groups)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질이다.

실리콘(silicone)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半) 액체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silicone oil)·그리스(grease)·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 (1) 실리콘유(silicone oil)와 그리스(grease)는 고온이나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방수 침투제·유전체·기포 방지제·이형제(mould release agent) 등으로서 사용한다. 조제 윤활제로서 실리콘 그리스나 실리콘유를 함유한 혼합물로 조성된 것은 **제2710호나 제3403호**에 각각 해당된다(해당 해설서 참조).
- (2) 실리콘수지(silicone resin)는 주로 고온에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바니시·절연용이나 방수 도포제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보강용 재료로서 유리섬유·석면·운모와 적층한 라미네이트 제조·유연성 주형과 전기 봉합용에도 사용한다.
- (3) 실리콘 탄성중합체(silicone elastomer)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이나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하는 와셔(washer)나 그 밖의 기구의 패킹(packings)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뇌수종(腦水腫 : hydrocephalus)에 사용하는 자동 브레인 밸브(brain valve)의 제조에 사용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

이 호에는 제34류의 주 제3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실리콘(silicone)은 **제외한다(제3402호)**.

39.11 - 석유수지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술폜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 -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3911.20 -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391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석유수지(petroleum resin) · 쿠마론(courmarone) · 인덴(indene) · 쿠마론-인덴수지(courmarone-indene resin)와 폴리테르펜(polyterpene)** : 고중합체가 아닌 수지 그룹으로서 분해된 석유 증류액 · 콜타르(coal tar) · 터펜틴(turpentine) · 그 밖의 테르펜(terpene)원료로부터 얻은 다소의 불순물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수지는 접착제 · 도포제에 사용하며 예를 들면, 바닥타일에서 사용하는 고무나 플라스틱에 유연제로 부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 (2) **폴리술폜(polysulphide)** : 예를 들면, 폴리(페닐렌 술폜)와 같이 중합체 사슬에 황화물 결합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 중합체이다. 폴리술폜의 개개 황(sulphur) 원자는 술폜(sulphur)-술폜(sulphur) 결합을 함유하고 있는 제40류의 티오플라스트(thioplast)와는 반대로 양쪽에 탄소 원자로 결합되어 있다. 폴리술폜(polysulphide)는 도포제와 항공기 · 자동차 부분품 · 펌프 임펠러(pump impeller) 등의 성형 제품에 사용한다.
- (3) **폴리술폜(polysulphone)** : 중합체 사슬에 술폜결합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 중합체이다 [(예: 비스페놀 A(4, 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나트륨염과 비스(4-클로로페닐) 술폜의 반응에 의하여 얻은 물품)]. 이들은 전기기기의 부분품 · 가정용 기기 등에 사용한다.
- (4)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을 함유한 중합체**로서 다른 곳에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것 :
 - (a) **헥사메틸렌다이소시아네이트(HDI : hexamethylene diisocyanate)를 기본 재료로 한 폴리우레아(polyurea)** : 프리폴리머(prepolymer)를 생산하기 위하여 물과의 반응으로 합성되며 평균적으로 3과 4사이의 단량체(單量體 : monomer)를 갖는 프리폴리머(prepolymer)이다. 이 물품은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의 제조에 사용한다.
 - (b)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polyisocyanurate)** : **헥사메틸렌다이소시아네이트(HDI)를 기본 재료로 한 프리폴리머(prepolymer)를 제조하기 위하여 단량체(單量體) 사이의 이소시아누레이트결합과의 반응으로 합성된다.** 프리폴리머는 평균적으로 3과 5사이의 단량체(單量體)를 갖는다. 이 물품은 페인트와 바니시의 제조에 사용한다.
- (5)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물품**에는 폴리크실렌수지 · 폴리(1,4-디이소프로필벤젠) · 폴리비닐케톤 · 폴리에틸렌이민과 폴리이미드를 포함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 ·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39.12 -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 가소화하지 않은 것

3912.12 -- 가소화한 것

3912.2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3912.39 -- 기타

3912.90 - 기타

(A) 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식물성 물질의 고정구조를 형성하는 고분자량의 탄수화물이며 목면(cotton)에는 거의 순수한 상태로 함유되어 있다. 일차제품(primary form)의 것으로서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이 호에 해당된다.

재생 셀룰로오스(regenerated cellulose)는 셀룰로오스 크산티산염(cellulose xanthate)의 알칼리 용액을 산의 통 속에 밀어 넣 때 보통 침전·응고하여 얻어지는 광택 있는 투명한 물질이며 보통 **제3920호나 제3921호**에 분류하는 얇고 투명한 시트(sheet) 모양이거나 **제54류나 제55류**의 방직용 필라멘트 모양으로 되어 있다.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는 종이나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의 시트(sheet)를 염화아연으로 처리하여 제조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막대(rod)·관·시트·판·스트립 모양이므로 이 호에서 **제외한다**(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제3921호**).

(B)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

이 유도체에는 다른 용도는 물론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기본 재료로서 사용하는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도 포함한다.

셀룰로오스의 주요한 화학적 유도체는 다음과 같다[가소(plasticised)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1) **초산셀룰로오스(cellulose acetate)** : 이 물품은 셀룰로오스[보통 면(綿) 린터(linter)나 용해용의 화학목재펄프]를 촉매(예: 황산)의 존재 하에서 무수아세트산과 아세트산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를 첨가하면 불연성이며 사출성형에 적합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가루·알갱이나 용액 모양으로 되어 있다. 시트·필름·막대(rod)·관 등의 모양으로 된 초산셀룰로오스(cellulose acetate)는 **제외한다**(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제3921호**).

- (2) **질산셀룰로오스(cellulose nitrate)(니트로셀룰로오스)** : 이 물품은 셀룰로오스[보통 면(綿) 린터(linter)]를 질산과 황산의 혼산(mixture of acid)으로 처리하여 만든 것이다. 고도의 인화성이 있고 고도로 질화된 종류의 것(면화약)은 폭약용으로 사용하며 ; 안전상 이유로 알코올(일반적으로 에틸·이소프로필이나 부틸알코올)로 축축하게 하여 수송하거나 프탈레이트 에스테르(esters)로 축축하게 하거나 가소화(可塑化 : plasticised)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알코올의 존재 하에 장뇌(camphor)로 가소화시킨 질산셀룰로오스는(cellulose nitrate)는 **셀룰로이드(celluloid)**가 된다. 셀룰로이드는 보통 시트·필름·막대(rod)·관(tube)이나 그 밖의 압출성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호에서는 **제외하고**(일반적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제3921호**) ; 셀룰로이드(celluloid)는 사출성 모양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형용 가루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와 혼합한 질산셀룰로오스는 바니시(vernish)용 기본 재료로서 널리 사용하며 이 용도에 쓰기 위해서 건조하거나 풀 같은 추출물(extract)의 모양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에테르(ether)[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와 알코올(에틸알코올)의 혼합물에 질산셀룰로오스를 용해한 용액은 **콜로디온(collodion)**이며 본 항에 포함한다. 이 용액을 부분적으로 증발하면 고형의 셀로이딘(celloidin)을 얻는다.

- (3) **초산나산셀룰로오스(cellulose acetate butyrate)와 프로피온산셀룰로오스(cellulose propionate)** : 이들은 셀룰로오스에스테르(cellulose ester)로서 초산셀룰로오스와 일반적인 특성이 동일한 플라스틱이다.
-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메틸셀룰로오스와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시커너나 글루(glue)로서 사용한다[이 류 총설 제외 규정(b)의 글루(glue)에 대한 품목분류 참조]. 그 밖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에는 가벼운 플라스틱인 에틸셀룰로오스(ethyl cellulose)를 포함한다.

셀룰로오스(cellulose)로부터 화학적으로 유도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의 첨가를 요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

39.13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 -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3913.90 - 기타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이나 변성 천연 중합체 중 일부이다.

(1) 알긴산(alginic acid)과 그 염과 에스테르

알긴산(alginic acid) : 폴리(우론산)의 일종으로서 갈조류의 식물(*Phaeophyta*)을 알칼리 용액 중에서 침지하여 추출한다. 이 추출물(extract)을 무기산으로 침전시켜 알긴산을 얻거나 추출물을 처리하여 얻은 불순한 알긴산칼슘을 무기산으로 처리함으로써 높은 순도(純度 : purity)의 알긴산으로 변화시킨다.

알긴산은 물에 녹지 않지만 이것의 암모늄염이나 알칼리금속염은 찬 물에 쉽게 녹아 점성의 용액을 형성한다. 용액의 점성은 알긴산염의 순도(純度)나 원산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성의 알긴산염은 호부제·안정제·겔화제와 필름 형성제로서 예를 들면, 의약품업·식품공업·직물공업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한다.

이 물품은 보존제(예: 안식향산소다)를 함유하거나 겔화제(예: 칼슘염)·지연제(예: 인산염·구연산염)·촉진제(예: 유기산)와 조절제(예: 자당·요소)를 첨가함으로써 표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첨가제는 일반적 용도가 아닌 특정 용도에 특별히 적합하게 하는 물품이어서는 안 된다.

에스테르(ester) 중에는 식품 등에서 사용하는 프로필렌 글리콜 알긴산이 있다.

(2) 경화단백질(hardened protein)

단백질은 식물성이나 동물성 계의 고분자량의 질소함유 화합물이며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데 적합하다. 이 호에는 단백질을 화학적 처리로 경화(硬化)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며 소수의 것만 상업적 중요성을 갖는다.

경화단백질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모양의 블록·시트(sheet)·막대(rod)·관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된 경화단백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제3921호**).

(3)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고중합체인 천연고무는 화학처리에 의하여 가소성(plasticity)의 특성을 가진 특성의 물질을 만든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a) **염화고무(chlorinated rubber)** : 보통 백색의 소형 알갱이 모양으로 제조되며 사용 후에는 대기와 화학적인 변질에 견딜 수 있는 피막을 형성하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의 조제에 사용한다.
- (b) **염산고무(rubber hydrochloride)** : 일반적으로 포장용으로 사용하며 가소화하면 피복보호용으로 사용한다.

- (c) **산화고무(oxidised rubber)** : 촉매의 존재 하에 고무를 가열산화하여 얻어지며 어떤 종류의 바니시(vernish)에 사용하는 수지상 물질이다.
 - (d) **환화고무(cyclised rubber)** : 고무를 예를 들면, 황산·클로로황산이나 클로로스타닌산 등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이는 경도(硬度)가 다양한 물질로서 페인트 제조의 기본 재료·방수도포제와 어느 정도까지는 성형물품 제조에 사용한다.
- (4) **덱스트란(dextran)·글리코겐(glycogen) (“동물성 전분”)·키틴(chitin)과, 리그닌(lignin)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

이 호에는 전분으로부터 분별(fractionation)에 의해서 얻어진 유리 아밀로펙틴(isolated amylopectin)과 유리 아밀로스(isolated amylose)를 포함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서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변성하지 않은 천연 수지(**제 1301호**)
- (b)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테르화(esterified)한 로커스트콩(locust bean)이나 구아시드(guar seed)의 배유 고운 가루(**제 1302호**)
- (c) 리녹신(linoxyn)(**제 1518호**)
- (d) 헤파린(heparin)(**제 3001호**)
- (e) 전분에테르(starch ether)와 에스테르(ester)(**제 3505호**)
- (f) 로진·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에스테르검(ester gum)과 런검(run gum)을 포함한다](**제 3806호**)

**39.14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이온교환수지는 일반적으로 알갱이 모양의 가교 결합(cross-linked)된 중합체로서 활성(active)이온기를 함유하고 있다(보통 술폰·카르복실·페놀·아미노 그룹). 이러한 활성 이온기는 전해용액과 접촉하였을 경우 중합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온 중 한 이온과 그 전해용액에 함유하고 있는 이온(동일 양부호나 음부호) 중 한 이온과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물이나 밀크의 연화(softening)와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에 사용하며, 산(酸)용액으로부터의 우라늄의 회수·발효액으로부터의 스트렙토마이신의 회수와 그 밖의 다양한 공업 목적에 사용한다.

이온 교환수지 중 가장 흔한 것은 화학적으로 변성한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共重合體)·아크릴중합체나 페놀수지이다.

이 호에는 이 호의 이온교환수지로 채워진 이온교환수지 칼럼은 **제외한다(제3926호)**.

제 2 절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과 반제품 · 완제품

(제3915호 - 제3926호)

39.15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

- 3915.1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3915.20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 3915.3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3915.90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이 호의 물품은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e)[부스러기 · 더스트(dust) · 트리밍(trimminings) 등]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웨이스트 중 일부는 성형재료 · 바니시 기재 · 충전제 등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 · 페어링(parings) · 스크랩(scrap)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단일 종류의 열경화성 재료나 둘 이상의 열가소성 재료가 혼합된 웨이스트 · 페어링(parings) · 스크랩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을 포함하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parings) · 스크랩으로서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도 **제외한다(제7112호)**.

**39.16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막대(rod, stick) · 형재(型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6.2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6.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것) · 막대(rod, stick) · 형재(型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중공(中空 : hollow)의 형재(型材)는 제3917호의 관 · 파이프 · 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로 단지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연마 · 메트 가공 등)이 된 물품을 포함하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창틀을 봉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표면이 접착제로 된 형재(型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

횡단면의 최대치수 이하인 길이로 적절히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 이외의 별도의 방법으로 가공[천공(drilling), 밀링(milling), 접착 · 재봉에 의하여 조립된 것 등]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한 **제3918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 · 막대(rod) · 스틱(stick) · 형재(型材)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

39.17 - 플라스틱의 관 · 파이프 ·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 · 엘보(elbow) · 플랜지(flange)]

- 3917.1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 경질(硬質)의 관 · 파이프 · 호스
- 3917.21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3917.22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3917.23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3917.2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그 밖의 관 · 파이프 · 호스
- 3917.31 -- 연질(軟質)의 관 · 파이프 ·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 3917.32 --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917.33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917.39 -- 기타
- 3917.40 - 연결구류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 · 파이프 · 호스(tube, pipe and hose)”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i)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 · 타원형 · 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ii)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동여매거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

이 호에는 관 · 파이프 · 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joint) · 엘보(elbow) · 플랜지(flange)].

관 · 파이프 ·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ble)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 · 결합한 것도 있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의 관 · 파이프 등의 품목 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39.18 -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8.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 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 깔개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의 뒷 부분(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뒷면이 방직용 섬유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벽지·이와 유사한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4814호)**.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character)이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

**39.19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919.90 - 기타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 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접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character)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

39.2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920.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3920.2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3920.3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3920.43 --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 3920.49 -- 기타
 -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 3920.51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 3920.59 -- 기타
 -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3920.61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 3920.62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3920.63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3920.69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 3920.71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 3920.73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 3920.79 -- 그 밖의 셀룰로오스유도체로 만든 것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3920.91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 3920.92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 3920.93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 3920.94 -- 페놀수지로 만든 것
- 3920.9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길이가 평균 1mm이고 일반적으로 50%의 습기를 함유하고 있는 비응집성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섬유(가는 섬유)로 된 합성 종이 펄프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휘스커(whisker)·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구(球)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 셀룰러(cellular) 생산품(**제3921호**)과 외관상 시폭이 5mm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제54류**)도 제외한다.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sheet)·필름·박(箔: foil)·스트립(strip)”에는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것(corrugate)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테이블포)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3920.43호와 제3920.49호

이 소호의 물품은 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의 함유량에 따라 나누어지며, 이러한 이유로 1차 가소제(可塑劑)와 2차 가소제(可塑劑)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류의 소호 주 제2호 참조).

1차 가소제(可塑劑)는 저휘발성의 물질로서 중합체에 첨가될 때 일반적으로 유연성을 증대시킨다(예: 프탈산 에스테르·아디프산 에스테르·트리멜리트산 에스테르·포스포산 에스테르·세바산 에스테르·아젤산 에스테르).

증량제(extender)로 알려진 2차 가소제(可塑劑)는 가소제(可塑劑)로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1차 가소제(可塑劑)와 배합하여 사용할 때, 1차 가소제(可塑劑)의 특성을 변경시키거나 강화시킨다. 또한 2차 가소제(可塑劑)는 방염제(예: 염화파라핀)나 윤활제로서도 작용한다(예: 에폭시화한 대두유·에폭시화한 아마유).

39.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 셀룰러

3921.11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3921.12 --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3921.13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3921.14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3921.1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1.90 - 기타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foil)·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39.22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대 · 비데 · 화장실용 팬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대

3922.2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3922.90 - 기타

이 호에는 보통 상수도나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적절한 위치 · 주택 안에 영구히 부착되도록 설계된 용구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휴대용 비데 · 유아용 목욕통과 캠프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유사한 규격과 용도의 그 밖의 위생용품도 분류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세용 물탱크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베드팬(bed pan)과 실내용 변기(chamber-pot)와 같은 소형의 이동식 위생용품(**제3924호**)
- (b) 목욕실 · 화장실 · 주방용의 비누갑 · 수건걸이 · 칫솔걸이 · 화장지걸이 · 수건고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은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설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3925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924호**에 분류한다.

39.23 -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3923.2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3.30 -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3.40 - 스푼(spool)·콕(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50 -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90 - 기타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i) 특정 식품을 포장하거나 운반에 사용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을 지닌 손잡이가 없는 컵(식탁용품이나 화장용품으로서의 제2차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ii)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형품 : 한쪽은 막혀 있고 다른 쪽은 뚫려 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b) 스푼(spool)·콕(cop)·보빈(bobbin)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마그네틱 테이프가 감겨 있지 않은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를 포함한다)

(c) 뚜껑·마개·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특히 쓰레기통이나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같은 가정용품과, 식탁용품이나 화장용품으로 사용하는 컵으로서 물품의 포장·운반용의 용기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따금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는지에는 상관없다)(제3924호), 제4202호의 용기와 제6305호의 신축성의 중간형 벌크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39.24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 · 화장용품

3924.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92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찻잔이나 커피잔 · 접시(plate) · 수프그릇 · 샐러드그릇 · 각종의 접시와 쟁반 · 커피포트 · 티포트 · 설탕사발 · 맥주잔 · 컵 · 소스보트 · 과일사발 · 양념병 · 소금저장그릇 · 거자포트 · 달걀 컵(egg cup) · 티포트스탠드(teapot stand) · 테이블 매트 · 칼받침 · 서비에트 링(serviette ring) · 칼 · 포크 · 스푼
- (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 · 젤리 틀 · 주방용 주전자 · 저장단지 · 큰상자와 상자(차 상자 · 빵 상자 등) · 깔때기 · 국자 · 주방형 용량 측정그릇 · 반죽을 미는 밀대
-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 · 온수병 · 성냥갑 홀더 · 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 (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물통 · 물뿌리개 · 도시락 상자 · 커튼 · 드레이프(drapes) · 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
-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 · 사발 등) · 위생 들통(sanitary pail) · 변기 · 소변기 · 실내용 변기(chamber-pot) · 타구 · 도취캔(douche can) · 세안 컵 ; 젓병 꼭지(포유 젓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 비누컵 · 수건걸이 · 칫솔걸이 · 화장지 홀더 · 수건 고리와 목욕탕 · 화장용 ·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류 · 못 · 볼트 ·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로 고안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

*
* *

이 호에는 식탁용이나 화장용의 손잡이 없는 컵도 분류하는데, 이것은 물품의 포장이나 운반을 위한 용기의 특성이 없는 것이다(때때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물품의 포장이나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손잡이가 없는 컵은 **제외한다(제3923호)**.

39.25 -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925.10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3925.2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 3925.3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 3925.90 - 기타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3925.20호

소호 제3925.20호는 건물·방(실) 등의 출입구를 닫는데 사용하는 여닫이문(hinged barrier)이나 미닫이문(sliding barrier)을 분류하며 마당·정원·안뜰 등의 출입구를 닫는 울타리문(“게이트(gate)”로 부르는 것)은 **제외한다(소호 제3925.90호)**.

39.26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 3926.1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 3926.20 -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한다)
- 3926.30 -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 3926.4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 3926.90 - 기타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플라스틱 시트(sheet)를 봉합하거나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완구는 **제외한다**)
[예: 앞치마·벨트·유아용 턱받이·레인코트(raincoat)·드레스 쉴드(dress-shield)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후드(hood)가 함께 제시
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 (2) 가구·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 (3)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 백·차양·
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 (5) 문진·종이칼·압지철(blotting-pad)·펜레스트(pen-rest)·책갈피 등
- (6)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
- (7)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엘리베이터용 벨트로서 엔드리스(endless)의 것·특정의
길이를 절단하여 끝과 끝을 연결한 것이나 파스너(fastener)를 부착시킨 것

기계·장치와 함께 제시하는 전동용, 컨베이어용·엘리베이터용 벨트(belts)와 벨팅(belting)(실제기계나
기구에 끼여 있는지에 상관없다)은 해당 기계나 장치와 함께 분류한다(예: **제16부**). 또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벨팅은 **포함하지
않는다(제11부, 예: 제5910호)**.
- (8) 제3914호의 중합체를 담은 이온 교환수지 칼럼
- (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를 담은 플라스틱용기(얼음 백으로 사용
하는 것)
- (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
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제4202호 해설 참조)
- (11) 젓꼭지(젓먹이의 젓꼭지) ; 아이스-백 ; 휴대용 관수기·관장(灌腸 : enema) 주머니·그
부속품 ; 환자용과 유사 간호용 쿠션 ; 피임용 페서리(pessary) ; 콘돔(피임용구) ; 주사용
구(球 : bulb)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끼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작은 구슬(비드: bead)·시계용 유리·숫자(figure)나 문자(letter)·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

(13) 인조손톱

이 호에서는 쓰레기통이나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같은 가정용품을 **제외한다**.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합성고무·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이들의 재생품[가황(加黃)한 것인지 또는 경질(硬質)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외의 그 제품)
 - 나.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 다. 제65류의 모자류(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 라. 제16부의 기계류, 전기기구나 이들의 부분품(모든 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
 - 마. 제90류·제92류·제94류·제96류의 물품
 - 바. 제95류의 물품(운동용 장갑, 병어리장갑과 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3. 제4001호부터 제4003호까지,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만을 적용한다.
 - 가. 액체 상태와 페이스트(paste)상태의 물품[라텍스 (프리-벌커나이즈된 (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 그 밖의 분산액과 용액을 포함한다]
 -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베일(bale)·가루·알갱이·부스러기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4.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섭씨 18도와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나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되어질 수 있다. 주 제5호나목의 2)와 3)에 규정된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증량제·가소제·충진제와 같이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 나. 티오플라스트(thioplast)(티엠)
 - 다. 플라스틱과 그래프팅(grafting)이나 혼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解重合)된 천연고무, 포화 합성고 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목의 가황·늘림·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가.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다음을 배합한 고무나 고무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가황제·가황촉진제·지연제·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 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2) 안료나 그밖의 착색제(식별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3) 가소제나 증량제[유전(油展)고무의 경우에는 광유(mineral oil)는 제외한다]·충전제·보강제·유기용제나 그 밖의 물질(나목의 물질은 제외한다)
- 나.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다음의 물질을 함유한 고무나 고무 혼합물을 포함한다(고무나 고무 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유화제나 점착방지제
 -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 고무 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 고무 라텍스 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붕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안정제·점도조절제와 이와 유사한 특수 목적의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4004호에서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이란 고무의 제조나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절단·마모나 그 밖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실(thread)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의 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로 분류한다.
 8. 제4010호의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cord)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고무의 정의

“고무(rubber)”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고무라는 용어는 이 류와 다른 류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즉, 고무같은) 천연 검(gum)(제4001호 해설 참조)

(2)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정의한 **합성고무(synthetic rubber)** : 주 제4호가 요구하는 시험을 위하여 불포화 합성물질의 견본이나 주 제4호다목(가황하지 않은 원료의 상태의 것)에 규정한 종류의 물질을 황으로 가황하고 다음에 늘림(elongation)과 복원성(recovery)에 대한 시험(제4002호 해설 참조)을 한다. 따라서 주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유(mineral oil) 등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견본이나 해당 재료를 제거해 버린 견본에 대한 시험을 한다. 이와 같은 시험을 할 수 없는 가황한 고무 물품의 경우에는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가황하지 않은 그 물품의 원료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정에 의하여 합성고무로 간주하는 티오플라스트(thioplast)에 대해서는 시험을 요하지 않는다.

(3)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해설 참조)

(4) **재생고무(reclaimed rubber)**(제4003호 해설 참조)

“고무(rubber)”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으로서 가황하지 않은(unvulcanised) 것, 가황(vulcanised)한 것이나 경질(硬質 : hard)의 것을 분류한다.

“가황한(vulcanised)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그 밖의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 금속 산화물·셀렌(selenium)·텔루륨(tellurium)·2황화티우람과 4황화티우람·특정의 유기과산화물과 특정의 합성 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의 사용이나 고(高) 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plastic)성에서 탄력(elastic)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 제4호의 규정 즉, 어떤 물질이 합성 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 처리하였거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황 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부터 제4017호까지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에 더하여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활성제·지연제·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증량제·충전제·보강제나 이 류의 주 제5호나목에 규정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compounded rubber)로 간주하여 모양에 따라 제4005호나 제4006호에 분류한다.

경질(硬質 : hard) 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 실제로 연질(軟質)성과 탄력성이 없을 정도로 황의 비율이 높은 가황고무로 만들어진다.

이 류의 범위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이나 경질(硬質 : hard)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호의 일반적인 배열은 다음과 같다.

(a) 주 제5호를 제외하고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본질적으로 일차제품(primary form)의 모양이나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 모양의 고무를 분류한다.

- (b) 제4003호와 제4004호에는 일차제품(primary form)의 모양이나 판·시트·스트립 모양의 재생고무와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스크랩(scrap)[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로부터 얻은 고무 가루와 고무 알갱이를 분류한다.
- (c) 제4005호에는 일차제품 모양이나 판·시트·스트립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를 분류한다.
- (d)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과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e) 제4007호부터 제4016호까지 경질(硬質) 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반제품과 제품을 분류한다.
- (f) 제4017호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경질(硬質) 고무[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경질(硬質) 고무의 제품을 분류한다.

일차제품 모양(primary form)(제4001호부터 제4003호까지·제4005호)

“일차제품 모양(primary form)”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프리벌커나이즈드라텍스(pre-vulcanised latex)가 “일차제품(primary form)”을 정의하는 규정에 열거하였으므로 가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유기용제가 첨가된 고무나 고무의 혼합물은 제외하므로(주 제5호 참조) 주 제3호의 “그 밖의 분산액과 용액(other dispersion and solution)”은 제4005호에만 적용한다.

판·시트와 스트립(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

이들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을 포함한다. 판·시트·스트립에는 표면 가공한 것[프린트한 것·부조 모양을 한 것·홈을 판 것·리브(ribbed)한 것 등]이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도 있으나(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별도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는 덩어리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있는 것이나 두 가지의 것)이 있는 고무이다. 셀룰러 고무에는 스펀지·발포고무(foam rubber)·팽창고무(expanded rubber)·마이크로포러스 고무(microporous rubber)·마이크로셀룰러 고무(microcellular rubber)를 포함한다. 셀룰러 고무는 연질(軟質 : flexible)성의 것도 있으며 경질(硬質 : hard)성의 것[예: 에보나이트 스펀지(ebonite sponge)]도 있다.

주 제5호

이 류의 주 제5호에는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스트립 모양의 고무나 고무의 혼합물로서 배합하지 않은 것(제4001호와 제4002호)과 배합한 것(제4005호)과의 구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주는 배합이 응고 전에 시행되었거나 응고 후에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구별을 하지 않는다. 다만, 주 제5호에서는 제4001호와 제4002호의 고무나 고무의 혼합물에 특정의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은 고무나 고무의 혼합물이 원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러한 물질에는 광유(mineral oil)·유화제·접착방지제·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유화분해 잔유물과 소량(일반적으로 2% 미만)의 특정 목적의 첨가제를 포함한다.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분류는 본래 제11부의 주 제1호자목,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컨베이어용이나 전동(transmission)용의 벨트(belt)와 벨팅(belting)에 대해서는 제40류의 주 제8호와 제59류의 주 제6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물품은 이 류에 분류한다.

- (a)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이며 펠트를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것 ;
- (b) 부직포(nonwoven)를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이나 부직포 양면 모두에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 (c)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로서 1,500g/m²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의 것 ;
-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펠트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나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인 것

*
* *

이 류에는 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은 **제외한다**. 이 이외에 추가로 제외하는 물품은 이 류의 특정호의 해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40.01 - 천연고무 ·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001.22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001.29 -- 기타

4001.30 -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고무의 라텍스는 원칙적으로 고무나무 특히 헤비아 브라질리엔시스(*Hevea brasiliensis*) 종의 나무에서 분비되는 액이다. 이 액은 유기와 광물성 물질[단백질 · 지방산과 그 유도체와 염 · 당류와 글리코시드(glycoside)]의 수용액으로 되어 있으며 고무[즉, 고분자량의 폴리이소프렌(polyisoprene)]가 30%부터 40%까지 현탁(懸濁 : suspension)상태로 함유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안정화하거나 농축한 천연고무의 라텍스.** 고무의 라텍스는 탭핑(tapping)을 하고 몇 시간 후 저절로 응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 따라서 보존을 확실히 하고 부패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정제를 첨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통 라텍스 1리터당 5g부터 7g까지의 비율로 암모니아를 라텍스에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여 “full ammonia”나 FA형이라고 알려진 물품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안정화방법은 “low ammonia”나 LA형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암모니아와 그 밖의 물질[예를 들면, 테트라메틸티우람디설파이드(tetramethylthiuramdisulphide)와 산화아연]의 저농축 혼합물의 극소량(라텍스 1리터당 1g부터 2g까지)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냉 지역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소량의 살리실산나트륨이나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하여 안정화한 **내동결성(耐凍結性)의 천연고무라텍스**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천연고무의 라텍스는 여러 가지의 방법[예: 원심분리 · 증발 · 크림법(creaming)]으로 농축된 것이다(주로 수송목적으로).

상업용 라텍스(commercial latex)의 고무 함유량은 보통 60%부터 62%까지이며 ; 농도가 높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형분(solid) 함유량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 (2) **감열(thermosensitive : heat-sensitive) 천연고무 라텍스.** 이것은 감열제를 첨가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가열하면 비감열 라텍스보다 빨리 “겔(gel)” 화한다. 일반적으로 침지(沈漬 : dipped) 제품과 성형 제품의 제조 · 폼(foam) 고무나 스펀지(sponge) 고무 제조용에 사용한다.

- (3) **양성(electropositive) 라텍스.** 이 라텍스는 보통의 농축라텍스의 고무입자를 역전시켜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전전하라텍스(reversed electric charge latex)”라고도 칭하며 보통 양이온(cationic)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방직용 섬유는 알칼리성 상태 하에서는 그 정전하가 음성(부)이기 때문에 보통 라텍스와 같이 고무의 침투가 곤란하나 이러한 양성라텍스를 사용하면 전하를 역전시켜 침투가 용이하다.

- (4) **천연고무의 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 이것은 라텍스에 가황제를 첨가하여 일반적으로 섭씨 100°C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얻는다.

라텍스에 함유된 고무입자는 침강황(沈降黃)이나 콜로이드황·산화아연과 가황촉진제 [예: 디티오카르바메이트(dithiocarbamate)]를 과잉첨가하여 가황된다. 완성품의 가황정도는 온도의 변화·가열시간·사용한 배합제의 비율에 따라 임의로 달라진다. 보통 고무입자의 외벽만이 가황된다. 사용한 라텍스의 과잉가황을 피하기 위하여 잉여배합제는 가열 후 원심분리로 제거시킨다.

외관상 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는 보통 라텍스와 동일하며 결합된 황의 함유량은 보통 1% 자리수 정도이다.

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를 사용하면 많은 공정(예: 분쇄·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용도는 침지(沈漬 : dipped) 제품·성형 제품(의약·외과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며, 섬유공업·접착제로서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질의 종지와 콤포지션(composition) 가죽의 제조용에 사용한다. 또 단백질과 가용성 물질의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전기절연성이 좋은 고무제품을 얻을 수 있다.

천연고무 라텍스는 내부가 도포된 드럼(약 200리터들이)이나 벌크 모양으로 출하된다.

(B) 그 밖의 모양의 천연고무

이 호에서의 “천연고무(natural rubber)”는 전통적으로 생산지로부터 출하되는 헤비아(Hevea) 고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하하기 전에 재배지 공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운송이나 보존을 용이하게 하거나 천연고무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여 그 2차적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마지막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처리된 고무를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서는 원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카본블랙(carbon black)·실리카(silica)나 주 제5호가목에서 금지한 종류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천연고무 라텍스의 응고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탱크(tanks)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 탱크에는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가 부착되어 있기도 한다. 고무의 소구체(globule)를 수성유액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예를 들면, 1% 아세트산이나 0.5% 포름산을 첨가하여 약간 산성화함으로써 라텍스를 응고시킨다. 응고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응고물이 슬래브(slab)나 연속 스트립(strip)의 형태로 분리된다.

이후의 처리공정은 스모크드시트(smoked sheet)·페일크레이프(pale crepe)·브라운크레이프(brown crepe)·재응결한 알갱이나 유동성 가루 중 어느 것이 제조되는지에 따라 상이하다.

(1) **고무 시트(sheet)와 크레이프(crepe)**

시트(sheet)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무 스트립(rubber strip)을 압연기에 통과시키는데 그 압연기의 엠보스 롤(embossed roll)의 최종 세트에 걸어서 특유한 무늬(증발 표면적을 증가 시킴으로써 건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를 표면에 만든다. 고무스트립(두께가 약 3~4mm)은 압연기에서 나와서 시트로 얇게 베어진다. 그리고 이 물품은 건조실이나 훈연실에 놓아두게 된다. 훈연하는 목적은 고무를 건조시키고 크레오소틱(creosotic)물질(산화방지제와 방부제의 효과를 부여한다)을 침투시키기 위한 것이다.

페일 크레이프(pale crepe)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무 응고물을 일조의 크레이프기에 넣는다. 한 기계는 홈이 파인 롤러가 있고 다른 기계는 평활한 롤러가 있어서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이 조작은 고무가 충분히 세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흐르는 물속에서 행하여진다. 그런 다음 통풍장치가 된 건조실에서 실온(室溫)이나 뜨거운 공기 속에서 건조한다. 두매 이상의 크레이프를 붙여서 소울 크레이프(sole crepe)의 슬래브(slab)를 만들기도 한다.

시트는 또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만들게 된다. 라텍스를 원통형의 탱크에서 응고시킨 후 응고물을 톱으로 긴 스트립(strip) 모양으로 얇게 베어 시트로 절단하고 건조시킨다[일반적으로 훈연(smoking)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고무[특히, 페일 크레이프(pale crepe) 이외의 크레이프(crepe)]는 라텍스의 응고에 의해서 직접 제조되지 않고 고무수지를 절개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이나 공장의 공정에서 얻어진 응고물을 제2차적으로 다시 응고시키고 크레이프기에서 세정하여 만든다. 이렇게 하여 만든 시트 모양의 고무는 두께가 다양하며 페일 크레이프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한다.

위의 천연고무는 보통 관련 국제기구가 설정한 국제규격에 해당하는 모양과 등급에 따라 거래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와 그 절단품·페일 크레이프(pale crepe)와 그 절단품·브라운크레이프(brown crepe)와 리브드 시트(ribbed sheet)와 에어드라이드 시트(air dried sheet)**이다.

(2) **공업 규격화된 천연 고무(TSNR : technically specified natural rubber)**

이것은 다음 표의 명세에 따라 5개의 일반적 등급(5L·5·10·20·50)으로 가공·분석과 등급분류된 건조한 천연고무의 원료이다.

표 : 각 파라미터에 대한 TSNR등급과 최대 허용 한계치

등 급	5L	5	10	20	50
파라미터					
325메시에 남는 먼지량 (최대중량%)	0.05	0.05	0.10	0.20	0.50
회 분 (최대중량%)	0.60	0.60	0.75	1.00	1.50
질 소 분 (최대중량%)	0.70	0.70	0.70	0.70	0.70
휘 발 분 (최대중량%)	1.00	1.00	1.00	1.00	1.00
월리스 신속가소도-최소 개시도 (P ₀)	30	30	30	30	30
가소도보유지수 · PRI(최소%)	60	60	50	40	30
색한도(Lovibond scale · 최대)	6.00	-	-	-	-

TSNR에는 생산국의 관계당국이 발행한 고무의 등급·규격과 분석결과에 대한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특정의 생산국은 앞에서 설명한 표보다 더 엄격한 규격의 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TSNR은 고무를 베일(bale)에 넣었을 때 무게가 33½kg으로서 폴리에틸렌으로 포장한다. 보통 30베일이나 36베일이 한 팰릿(pallet)을 이루며 폴리에틸렌 라이너로 안을 덮거나 폴리에틸렌으로 수축 포장(shrink-wrapped)한다. 등급·중량·생산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베일이나 팰릿에 특별한 마크를 표시한다.

(3) 재응결고무입자(re-agglomerated rubber granule)

알갱이 상태의 고무를 가공하는데 쓰이는 기술은 고무 시트(sheet)나 고무크레이프보다 더욱 일정한 특성과 외관이 더욱 좋은 깨끗한 물품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다.

제품공정은 응고물의 알갱이 모양화, 특별히 충분한 세정, 건조와 베일(bale) 속에 압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알갱이 모양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종류의 기계, 예를 들면, 로타리 블레이드 톱퍼(rotary blade chopper)·크로스 해머 밀(cross hammer mill)·펠레팅기(pelleting machine)·크레이핑기(creping machine)를 사용한다. 전적으로 기계적 작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응고 전의 라텍스에 혼합시킨 소량의(0.2%~0.7%) 피마자유(castor oil)·스테아르산아연이나 그 밖의 입화제(crumbling agent)를 첨가하기도 한다. 이들 입화제는 고무의 제2차적인 용도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갱이 상태의 고무는 반(半)연속식의 트롤리형 건조기·컨베이어 벨트식 터널 건조기나 압출식 건조기에서 건조된다.

건조된 알갱이 모양 고무는 마지막으로 고압 하에서 32kg~36kg의 평행육면체형의 베일에 압축된다. 재응결 고무입자는 보통 보증부 품질명세서와 함께 판매된다.

(4) 천연고무의 유동성(free-flowing) 가루

이 물품은 앞 (3)에 설명된 방법으로 제조되지만 압축공정은 없다.

개개의 입자가 자체의 중량의 작용으로 재응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과정 중에 가루 상의 불활성 물질(예: 활석)이나 그 밖의 점착방지제를 혼합한다.

또한 고무 가루는 특히 입자의 응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실 속으로 라텍스·불활성 물질(예: 규산질의 흙)을 주입시켜서 얻는다.

(5) 특수한 종류의 천연고무

특수한 여러 가지의 천연고무는 앞에서 설명한 (1)부터 (4)까지에 열거한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그 중요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CV(constant viscosity : 불변점도)고무와 LV(low viscosity : 저(低)점도)고무

CV고무는 응결 전에 소량(0.15%)의 히드록실아민을 첨가하여 얻으며 LV고무는 역시 응결 전에 소량의 광유(mineral oil)를 첨가하여 얻는다.

히드록실아민은 저장 중 천연고무의 점성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고무를 사용하게 되면 제조자는 마스티케이션(mastication : 반죽)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b) 해교고무(peptised rubber)

응고전의 라텍스에 약 0.5%의 해교제(peptising agent)(건조작업 중에 고무의 점성을 감소시킨다)를 첨가하여 얻는다. 따라서 이 마스티케이션(mastication : 반죽)에 비교적 단시간이 소요된다.

(c) S·P 고무(superior processing rubber)

보통의 라텍스와 프리-벌커나이즈(pre-vulcanised) 라텍스의 혼합물을 응고시키거나 천연라텍스 응고물에 프리-벌커나이즈 라텍스 응고물을 혼합하여 얻는다. 이 물품을 사용하게 되면 압출공정과 압연공정이 용이하게 된다.

(d) 순화고무(purified rubber)

이 물품은 이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고무제조의 보통의 공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얻는다(예: 라텍스를 원심분리시키는 것).

염화고무의 제품과 어떤 종류의 가황제품(예를 들면, 전선 등으로서 고무에 일반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물품이다)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e) 스킴고무(skim rubber)

이 물품은 라텍스 스킴(latex skim)의 부산물을 응고시켜 얻는다.

(f) **항결정화고무(anticrystallising rubber)**

응고 전 라텍스에 티오안식향산을 첨가하여 얻어지며 ; 따라서 이 물품은 내동결성(耐凍結性)을 가지게 된다.

(C) **발라타(balata)**

발라타 검(balata gum)이나 발라타(balata)는 *Sapotaceae*과에 속하는 어떤 수목의 라텍스, 특히 주로 브라질산인 불렛트리(bullet-tree)(*Manilkara bidentata*)에서 압출한다.

발라타(balata)는 붉으스레한 물질이며 50kg까지는 블록 모양으로 보통 출하되지만 두께 3mm~6mm의 시트(sheet) 모양으로도 출하될 때도 있다.

주로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의 벨트(belt)나 벨팅(belting)제조에 사용하며, 구타페르카(gutta-percha)와 혼합하여 해저전선과 골프공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D) **구타페르카(gutta-percha)**

구타페르카(gutta-percha)는 사포타세아에(*Sapotaceae*)과의 여러 가지 수목[예: 팔라퀴움(*Palaquium*)과 파이에나(*Payena*)속]의 라텍스에서 추출한다.

구타페르카는 황색이나 황적색이며 원산지에 따라서 중량이 0.5kg~3kg의 케이크 모양이나 25kg~28kg의 블록 모양으로 출하된다.

발라타와 혼합하여 해저전선·골프공과 벨팅(belting)의 제조에 사용하는 한편 펌프나 밸브용 실링·아마방적용 롤러·탱크의 내장·불화수소산용 병·접착제 등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

(E) **구아울 검(guayule gum)** : 멕시코원산의 관목인 파르테니움 아르겐타툼(*Parthenium argentatum*)의 라텍스에서 추출된다.

구아울(guayule) 고무는 일반적으로 케이크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출하된다.

(F) **치클 검(chicle gum)** : 미국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사포타세아에(*Sapotaceae*)과에 속하는 특정 나무의 껍질에 함유한 라텍스에서 추출된다.

이 검(gum)은 불그스레하며 보통 여러 가지 크기의 케이크 모양이나 약 10kg 중량의 블록 모양으로 출하된다.

치클검은 추잉검(chewing-gum) 제조에 주로 사용하며 특정의 외과용 테이프와 치과용품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G)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예: 제루통)

이들 검(gum)이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고무와 유사하여야 한다.

(H)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상호혼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이 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제4002호**)
- (b) 응고 전후에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에서 금지한 물질과 배합한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울·치클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제4005호나 제4006호**)

40.02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 라텍스

4002.19 -- 기타

4002.20 - 부타디엔 고무(BR)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이나 BIIR)

4002.31 -- 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부틸고무)(IIR)

4002.39 -- 기타

-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 라텍스

4002.49 -- 기타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 라텍스

4002.59 -- 기타

4002.60 - 이소프렌 고무(IR)

4002.7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002.8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 기타

4002.91 -- 라텍스

4002.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합성고무**(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아래 내용 참조) : 합성고무에는 합성고무 라텍스 [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 합성고무 · 판(plate)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모양의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수송과 보존을 위하여나 다음번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려 하는 특성을 얻기 위하여 처리를 한 합성고무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로 원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합성고무에는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에서 금지한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전(油展 : oil-extended) 고무는 배합한 물품에 속하지만 주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 포함하며 ; 이 물품은 기름을 약 50%까지 함유하고 있다.

- (2)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 팩티스(factice)는 어떤 식물성 기름과 물고기 기름(산화된 것인지 일부를 수소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황이나 염화황을 반응시켜서 제조하는 물품이다.

팩티스는 물리적으로 약하며 주로 천연고무나 합성고무의 배합용이나 지우개의 제조용에 사용한다.

- (3)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상호 혼합물**

- (4)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주 제4호(합성고무의 정의)

이 주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a)와 (c)의 물질은 (a)의 가황(vulcanisation)·늘림(elongation)과 복원성(recovery)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반면에 (b)의 티오플라스트(thioplast)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합성고무**의 규정은 제4002호 뿐만 아니라 주 제1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무**라는 용어가 이 표의 어느 류에서 사용하는 간에 주 제4호에 규정한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합성고무(synthetic rubber)”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a) **불포화합성물질** : 이것은 주 제4호가목에 규정한 가황·늘림과 복원성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 시험 목적을 위하여 가황활성제·촉진제나 지연제와 같은 가교(cross-linking)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될 수도 있다. 소량의 유화분해 잔재물[주 제5호나목2)]과 주 제5호나목3)에 열거한 극소량의 특정 목적의 첨가물도 또한 첨가할 수 있다. 다만, 안료(식별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증량제·충진제·보강제·유기용제 등과 같이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광유(mineral oil)나 디옥틸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도 이 시험에 있어서 첨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 제4호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유(mineral oil)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거해 버린 견본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할 수 없는 가황한 물품의 시험을 위해서는 그 물품의 가황하지 않은 원료의 견본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포화합성물질에는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 - 부타디엔고무(XSBR)·부타디엔고무(BR)·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 고무(IIR)·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이나 BIIR)·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이소프렌고무(IR)·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디엔고무(EPDM)·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XNBR)과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고무(NIR)를 포함한다. 모든 이들 물질이 합성고무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가황·늘림과 복원성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 (b) **티오플라스트(thioplast)(TM)** : 지방산 디할로겐화물과 다황화소다를 반응시켜서 얻어진 포화합성물질로서 ; 일반적으로 보통의 가황제로 가황된다. 어떤 티오플라스트(thioplast)의 기계적 특성은 다른 품질의 합성고무에 비하여 열등하지만 용제(溶劑 : solvent)에 대한 저항성은 크다. 티오플라스트는 제3911호의 폴리황화물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제3911호** 해설 참조).
- (c) 다음의 물품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a)에 규정한 가황·늘림과 복원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 (1) **변성(modified) 천연고무** : 천연고무를 플라스틱과 그래프팅(grafting)하거나 혼합시켜 얻는다.
- 이 고무는 일반적으로 천연고무에 중합 가능한 단량체(單量體 : monomer)를 고착하여 중합촉매를 사용하거나 천연고무라텍스와 합성수지 라텍스를 혼합하여 공침전(co-precipitation)시켜서 얻는다.
- 변성천연고무의 주요특성은 어느 정도의 자기보강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천연고무에 카본블랙(carbon black)을 혼합한 것과 유사하다.
- (2) **해중합(解重合 : de-polymerised)된 천연고무** : 일정한 온도에서 기계적 처리(pounding)에 의하여 얻는다.
- (3) **불포화합성물질과 포화합성고중합체와의 혼합물**[예: 아크리로나이트릴-부타디엔 고무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와의 혼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탄성체(elastomer)(일반적으로 **제39류**)
- (b) 이 호의 물품으로서 응고 전후에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과 배합한 것(**제4005호**나 **제4006호**)

40.03 -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재생고무(reclaimed rubber)는 사용한 고무제품(특히 타이어)이나 가황된 고무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여러 가지의 화학적 기계적 처리로 연화(황을 제거하는 공정)시키고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얻는다. 재생고무는 결합 황 잔재물이나 그 밖의 결합 가황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생고무보다 성질이 열등하나 가소성과 점착성이 크다. 재생고무는 활석(talc)을 뿌리거나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에 의하여 분리되는 시트(sheet) 모양으로 출하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이나 판(plate)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모양의 재생고무(생고무나 다른 물질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재생고무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40.04 -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s) · 스크랩(scrap)”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미가황이나 가황고무[경질(硬質 : hard) 고무를 제외한다]의 제조나 가공으로부터 생긴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s) · 스크랩(scrap)**
- (2) **절단 · 마모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명백히 재사용할 수 없는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를 제외한다]**

이 범주에는 재생할 수 없는 낡은 고무타이어와 그 낡은 고무타이어를 보통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얻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a) **타이어를** 특수기계로 트링글 비드 와이어(tringle bead wire)나 힐(heel)의 근접부분을 **절단하는 것**
- (b) **트레드(tread)를 파열 제거하는 것**
- (c)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는 것**

이 호에는 재생에 적합한 사용한 타이어를 제외한다(제4012호).

-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에서 얻은 가루와 알갱이(granule)**

이들은 분쇄한 가황고무의 웨이스트(waste)로 되어 있으며 도로포장재료나 배합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고무에서 충전제로 사용되거나 고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으로 직접 성형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경질(硬質 : hard) 고무의 웨이스트 · 페어링(parings) · 스크랩 · 가루와 알갱이는 **제외한다(제4017호)**.

40.05 -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4005.1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 4005.20 -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기타
- 4005.91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4005.99 -- 기타

이 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plate)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모양을 분류한다.

“고무(rubber)”라는 용어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호에는 다른 물질과 배합한 천연고무 ·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 · 합성고무 ·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재생한 이들 물질을 포함한다.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에 따라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가황제 · 가황촉진제 · 지연제나 활성화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안료나 그 밖의 착색제(단순히 식별을 위해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 · 증량제[유전(油展 : oil-extended) 고무의 경우에 광유(mineral oil)는 제외한다] · 충전제 · 보강제 · 유기용제 · 그 밖의 물질[주 제5호가목에 제시한 물질은 제외한다]과 배합한 고무나 고무의 혼합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실리카(silica)와 배합한 고무**[광유(mineral oil)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범주에는 건조한 고무 100 파트와 카본블랙(carbon black) 약 40~70 파트로 조성된 카본블랙(carbon black) 마스터배취(masterbatch)를 포함한다. 이것은 보통 베일(bale)로 시판된다.

(B)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실리카(silica)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배합고무**

이것은 유기용제 · 가황제 · 가황촉진제 ·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 · 증량제 · 농축제와 충전제[카본블랙이나 실리카를 제외한다]와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적색 점토나 단백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두 개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배합 고무라텍스(compounded rubber latex)[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를 포함한다]로서 배합의 결과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갖지 않은 것
따라서 이 호에는 특히 라텍스바니시(varnish)와 페인트를 **제외한다(제32류)**.
- (2) 가황하지 않은 고무를 유기용제에 용해한 분산액과 용액으로서 침지한 제품의 제조하거나 완성제품의 도포용으로 사용하는 것

- (3) 배합고무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 재료로 된 판·시트·스트립으로서 1m² 당 중량이 1,500g/m²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 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의 것

이러한 물품은 캘린더가공이나 “검잉(gumming)”, 또는 두 개 공정을 병용하여 만들며 주로 타이어·튜브·파이프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 (4) 예를 들면, 타이어나 이너튜브의 수리용(hot process), 접착패치·특정의 기밀봉합용 와셔(washer)·고무입자 등의 제조용, 고무로된 신발바닥의 성형용으로 사용하는 배합고무의 그 밖의 판·시트·스트립

- (5) 가황 준비가 된 알갱이 모양의 배합고무로서 성형용에 사용하는 것(예: 제화공업)

이 호의 판·시트·스트립(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을 포함한다)은 표면가공(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 등)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있으나 그 밖의 다른 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나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착색제(레이크 안료를 포함한다)를 고무에 농후하게 분산한 것으로서 고무를 전체적으로 착색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
- (b) 라텍스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다소 페이스트(paste) 모양의 물품으로서 매스틱(mastic)·도장용 충전제나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로서 사용하는 것(제3214호)
- (c) 충전제·가황제와 수지를 첨가한 고무용액이나 분산액으로 된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글루나 접착제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고무용액과 분산액으로서 순 중량 1kg 이하의 것(제3506호)
- (d)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제4002호)
- (e) 생고무나 그 밖의 첨가물질과 혼합한 재생고무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재생고무인 것(제4003호)
- (f)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표면가공 이상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4006호)
- (g) 고무와 응결한 평행방직용 섬유소로 만든 판·시트·스트립(제5906호)

**40.06 -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 · 관 · 형재(形材)]과 제품
(예: 디스크 · 링)**

4006.1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4006.90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가황하지 않은 고무 형재(形材 : profile shape)** : 예를 들면, 횡단면이 직사각형 이외의 관과 스트립으로서 대개 압출 성형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타이어를 재생하는데 사용하는 “캐멀-백(camel back)”용 스트립(약간 부등변 사변형의 횡단면으로 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B)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관(tube)** : 압출 성형하여 제조하며 용도는 특히 제5909호에 열거된 관을 내장하는데 사용한다.

(C) **그 밖의 제품** : 가황하지 않은 고무제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고무실(rubber thread)** :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시트(sheet)를 나선형으로 절단하는 방법이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한 라텍스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화합물을 압출하는 방법으로 만든다.

(2)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링(ring) · 디스크(disc)와 와셔(washer)** : 주로 밀폐용기의 봉인용이나 두 부분[보통 경질(硬質 : rigid)물] 사이의 조인트(joint)를 실링(sealing)하는데 사용한다.

(3)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판(plate)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 표면가공 이외의 별도의 가공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접착테이프(지지물이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 해당 세번은 지지물의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 3919호 · 제4008호 · 제4823호 · 제5603호).

(b)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디스크와 링이 다른 물질의 개스킷(gasket)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와 접합한 것으로서 파우치 · 봉합대(envelope) ·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된 것(제8484호)

40.07 -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실(rubber thread)은 가황한 고무의 시트(sheet)나 판(plate)을 절단하거나, 압출하여 얻어진 실을 가황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전부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고무실**[단사(single strand)] : 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mm를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제4008호)**.
- (2) **고무끈(cord)**[다중사(multiple strand)] : 구성하고 있는 실의 굵기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재료를 **제외한다**(제11부).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고무실과 고무끈은 **제5604호**에 해당된다.

40.08 -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型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 판·시트(sheet)·스트립

4008.19 -- 기타

-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 -- 판·시트(sheet)·스트립

4008.2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시트(sheet)·스트립(strip)(횡단면이 5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

(3) **막대(rod)·형재(型材 : profile shape)[횡단면(모양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이 5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형재(型材)는 단일 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착색(전부나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 프레임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型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조각상태의 고무바닥 덮개와 판·시트(sheet)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만든 타일·매트와 그 밖의 물품도 분류한다.

방직용 섬유와 결합(전부나 표면)한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는 제외한다)로 만든 물품의 분류는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와 그 밖의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와 관련하여 무늬를 넣지 않거나 미표백·표백·균질하게 염색한 직물·펠트(felt)나 부직포를 앞에서 설명한 판·시트·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한 경우에는 단지 보강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를 넣거나 날염하거나 더욱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이나 특수물품[예: 과일직물·뿔(tulle)과 레이스]은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양면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결합시킨 것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602호·제5603호·제5906호)**.

- (B)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이거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 (C) 부직포(nonwoven)를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이나 부직포 양면 모두에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가황한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이나 전동(transmission)용의 벨트(belt)·벨팅(belting)(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다)(제4010호)
- (b) 고무의 판·시트·스트립[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하거나 성형한 것·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개방된 가장자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제4015호·제4016호)
- (c) 고무실과 결합한 직조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
- (d) 제5602호나 제5603호의 물품
- (e) 직물제의 양탄자나 양탄자유로서 뒷면을 셀룰러고무(cellular rubber)로 한 것(제57류)
- (f) 타이어 코드(tyre code) 직물(제5902호)
- (g) 제59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6호)
- (h) 고무실와 결합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60류)

40.09 -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1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2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2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3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4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4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硬質 : hard) 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tubes)·파이프(pipe)·호스(hose)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plies)”나 평행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실이나 금속실을 고무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파이프·호스는 얇은 직물시드(sheath)로 피복하거나 짐프(gimped)하거나 엮은(plaited) 방직용 섬유실로 피복한 것도 있으며 ;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나 외부의 나선형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때로는 “직조한 호스(woven hose)”라고 부르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관·파이프·호스를 **제외**하는데 이러한 관류는 내부를 고무라텍스로 도포하여 방수 처리하였거나 내부에 별개의 고무덮개(rubber sheath)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제품은 **제5909호**에 분류한다.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있는 관·파이프·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나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예: 이너튜브(inner tube) 제조용 튜빙(tubing)의 길이]은 제외한다.

40.10 -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010.12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010.19 -- 기타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

4010.31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010.32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010.33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010.34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010.35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4010.36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4010.39 -- 기타

이 호에는 컨베이어용이나 전동(transmission)용의 벨트(belt)와 벨팅(belting)으로서 가황한 고무만으로 되어 있거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 만든 것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실(textile yarn)이나 끈(cord)으로 만든 것(이 류의 주 제8호 참조)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유리 섬유직물·유리섬유로 보강하였거나 금속선으로 된 천(cloth)으로 보강한 가황한 고무로 만든 벨트와 벨팅도 분류한다.

벨트(belt)와 벨팅(belting)[가황한 고무만으로 만든 벨트나 벨팅은 제외한다]은 보통 몇 겹의 직물적층(고무 가공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예: 위사와 경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평행사의 적층)으로 만든 카커스(carcase)나 전부 가황한 고무로 피복한 철강제 케이블이나 스트립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이미 절단된 벨트(belt)[끝과 끝을 접합하거나 파스너(fastener)로 고착시켰는지에 상관없다]는 물론 일정한 길이의 벨팅(belting)(그 후에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며 ; 엔드리스(endless) 벨트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모두 직사각형·사다리꼴형[브이벨트(V-belt)와 브이벨팅(V-belting)]·원형이나 그 밖의 횡단면으로 되어 있다.

사다리꼴형 횡단면의 벨트(belt)나 벨팅(belting)은 이들의 물품 횡단면에 하나 이상의 “브이(V)” 모양을 가지고 있다. “브이(V)”표면은 유용한 췌기(wedging) 작용을 하는 것과 최소 미끄러짐을 위하여 한쪽 면에 시브(sheave)가 준비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이 범주에는 예로써, 다음과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벨트나 벨팅을 포함한다.

(A) 단일 사다리꼴 형의 것



(B) 맞은편에 사다리꼴 형의 것



(C) 같은 면에 둘 이상의 사다리꼴형의 것[브이홈(V)이 패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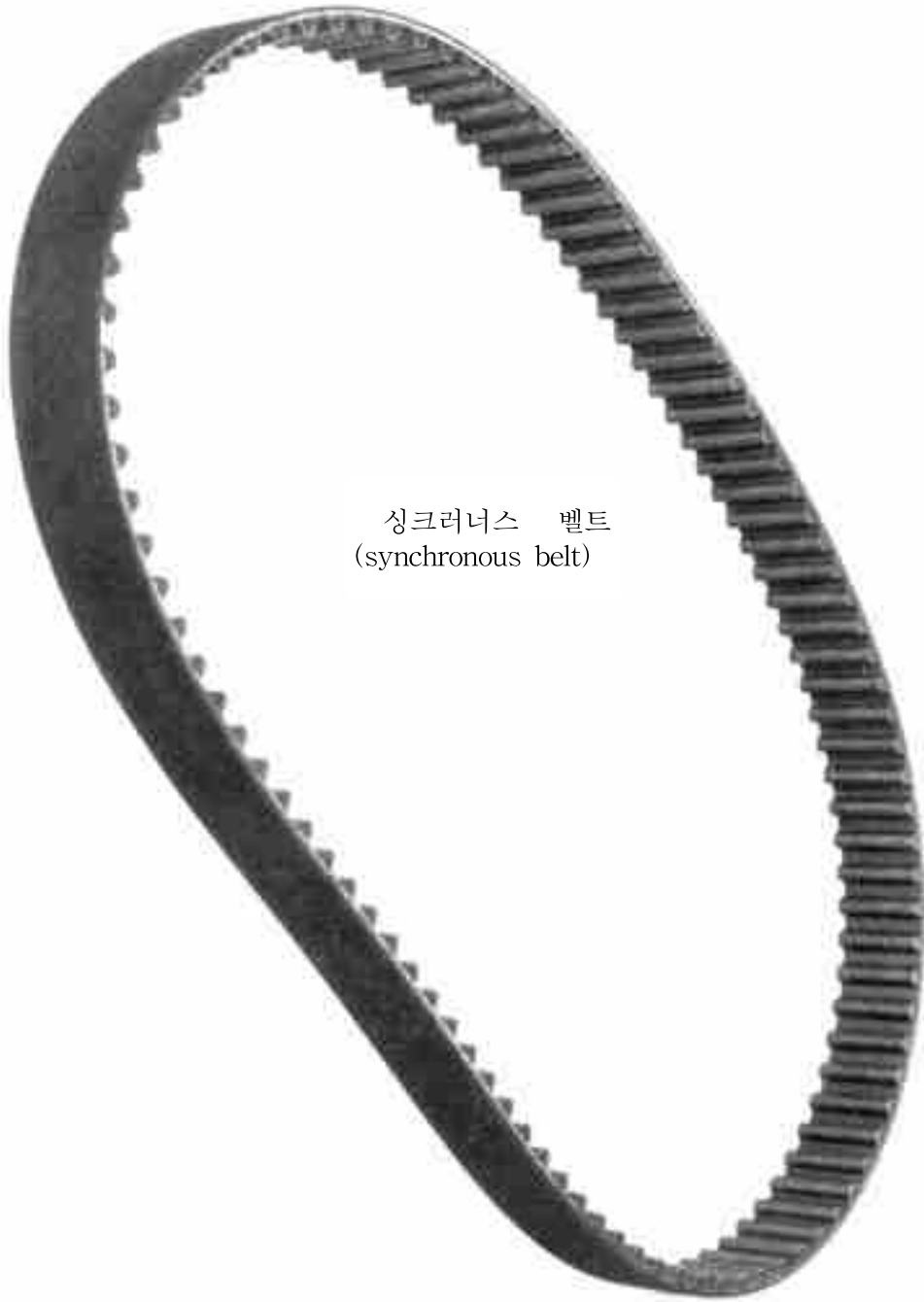


브이(V)홈이 패인 벨트는 마찰에 의해서 모양이 비슷한 도르레의 홈과 맞물리고 홈을 잡아주는, 세로방향으로 패인 마찰면이 있는 엔드리스(endless) 벨트이다. 브이(V)홈이 패인 벨트는 브이 벨트(V-belt)의 한 형태이다.

브이벨트(V-belt)나 벨팅(belting)에서 홈(groove)(주형으로 했거나·절단한 것)은 압박을 감소하거나·급속한 굽힘으로부터 열의 발사를 도와준다. 이것의 특히 중요한 것은 고속으로 구동하는 중에는 벨트가 작은 시브(sheave)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세로 방향의 홈을 제외한 홈은 브이벨트나 벨팅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싱크러너스벨트(synchronous belt)(그림 참조)는 시브(sheave) 사이에서 일정한 회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힘을 전달하도록 설계하였다. 완성품은 흔히, 타이밍벨트(timing belt)로 단순히 일컬어진다. 톱니 모양의 시브로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대개 벨트(belt)의 안쪽 양면 위에는 V자형 톱니 모양의 노치(notch)가 있다. 싱크러너스 벨트나 벨팅은 사다리꼴형 횡단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호의 벨트는 슬리브(sleeve)(관) 모양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슬리브에서 완성 품목으로 절단될 수가 있으며 ; 이 모양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싱크러너스 벨트
(synchronous belt)

컨베이어용이나 전동(transmission)용의 벨트(belt)나 벨팅(belting)은 기계나 기기(기계나 기기에 장치되었는지에 상관없다)와 함께 제시하면 그 기계나 기기의 해당 세번에 분류한다(예: 제16부).

40.11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011.20 - 버스용·화물차용

4011.30 - 항공기용

4011.40 - 모터사이클용

4011.50 - 자전거용

4011.70 -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011.80 - 건설용·광산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011.90 - 기타

이러한 타이어는 여러 가지 자동차·항공기·차륜을 부착한 완구·기계류·포병무기 등에 사용한다. 또한 이들 물품 중에는 이너튜브(inner tube)가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것도 있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4011.70호

이 호에 분류하는 몇 가지 유형의 타이어의 그림이 아래에 제시하였다(설명 목적으로만 제시).

- 농업용 차량이나 기계용 타이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임업용 차량이나 기계용 타이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소호 제4011.80호

이 호에 분류하는 몇 가지 유형의 타이어의 그림이 아래에 제시하였다(설명 목적으로만 제시).

- 건축용 타이어 · 광업용 타이어 · 산업용 차량타이어나 기계용 타이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40.12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 재생타이어

4012.11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012.12 -- 버스용·화물자동차용

4012.13 -- 항공기용

4012.19 -- 기타

4012.20 - 중고 공기타이어

4012.90 - 기타

이 호에는 더 이상의 사용이나 재생용에 적합한 고무로 만든 재생 공기타이어(retreaded pneumatic tyre of rubber)와 중고공기타이어(used pneumatic tyre of rubber)를 포함한다.

솔리드(solid) 타이어는 예를 들면, 바퀴가 달린 완구와 이동성 가구제품에 사용한다. 내부에 밀폐된 공간(air space)을 가진 솔리드 타이어인 **쿠션 타이어(cushion tyre)**는 손수레와 트롤리(trolley)에 사용한다. **타이어 트레드(tread)**는 공기타이어 골조의 원주 부분에 부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리브(ribbed)가 있는 트레드 형태를 갖는다. 이들 물품은 공기타이어를 재생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이 호는 **교환성 타이어 트레드(interchangeable tyre tread)**를 포함하는데, 그 목적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타이어 골조에 부착될 고리의 형태로 제시한다. **타이어 플랩(tyre flap)**은 이너튜브(inner tube)를 금속으로 만든 립(rim)이나 스포크(spoke) 끝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제39류 물품(예: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솔리드 타이어나 쿠션 타이어(일반적으로 **제17부**)와 재생(retreading)에 적합하지 않은 닳아서 못쓰게 된(worn-out) 타이어(**제4004호**)는 제외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4012.11호·제4012.12호·제4012.13호·제4012.19호와 제4012.20호

소호 제4012.11호·제4012.12호·제4012.13호와 제4012.19호의 규정에서 “재생타이어(retreaded tyre)”는 타이어 골조로부터 분리된 닳아 해진 트레드(tread)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새로운 타이어까지를 포함한다. (i) 어떤 트레드(tread)는 가황되지 않은 고무로 타이어 골조 위에 주조되며, (ii) 가황된 트레드는 가황될 수 있는 고무스트립(rubber strip)에 의해 타이어 골조에 부착된다. 그러한 타이어는 탑캡핑(top-capping)[트레드의 교체]·리캡핑(re-capping)[사이드월(sidewall) 부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재료로 트레드를 교체]이나 재생형 bead to bead[트레드(의 교체와 타이어 사이드월(sidewall)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사이드월(sidewall)의 수리]로 불릴 수도 있다.

소호 제4012.20호의 중고타이어(used tyre)는 **재절삭(recutting)**이나 **재그루빙(regrooving)**이 되는데 이것으로 마모된(그러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트레드의 홈은 절삭에 의해 깊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재그루빙(regrooving)은 대형자동차(예: 버스 그리고 화물차)에 사용하는 타이어에 행해진다. 재절삭(recut)과 재그루빙된(regrooved) 중고 타이어는 소호 제4012.11호·제4012.12호·제4012.13호와 제4012.19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부
40.12

또한 소호 제4012.11호·제4012.12호·제4012.13호·제4012.19호와 제4012.20호의 타이어는 **부수적인 재절삭 (supplementary recutting)**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절삭에 의해 원래의 트레드 무늬에 횡선이나 사선의 홈이 추가된다. 이러한 부수적인 재절삭은 소호 제4012.11호·제4012.12호·제4012.13호와 제4012.19호의 재생 타이어로서나 제4012.20호의 중고타이어로서 분류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수적인 재절삭이 된 새 공기타이어는 **제4011호**의 적절한 소호에 분류한다.

40.13 -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 버스용 · 화물차용

4013.20 - 자전거용

4013.90 - 기타

이너튜브(inner tube)는 예를 들면, 승용자동차 · 트레일러(trailer)나 자전거용의 타이어에 부착한다.

40.14 -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10 - 콘돔

4014.90 - 기타

이 호에는 위생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한다[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속품의 유무에 상관없다]. 따라서 특히 다음의 것이 여기에 분류한다. 콘돔·캐놀러(cannula)·주사기·주사기용 벌브(bulb)·분무기·점적기(dropper) 등·젓꼭지[포유 젓꼭지(nursing nipple)]·젓꼭지 씌우개·아이스-백·온수병·산소백·손가락 고무·간호용에만 사용하는 공기 압축식 쿠션(예: 링 모양)

이 호에는 외과의와 방사선 전문의의 앞치마·장갑과 같은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제외한다(제4015호)**.

40.15 -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 장갑, 병어리장갑

4015.12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4015.19 -- 기타

4015.90 - 기타

이 호에는 의류와 장갑 · 병어리장갑을 포함한 의류 부속품(예: 외과의사 · 방사선취급자 · 잠수부용 등의 보호용 장갑과 의류)으로서 접착 · 재봉이나 그 밖의 별도 방법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되어 있다.

(1) 전부가 고무로 만든 것

(2) 고무를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직물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펠트(felt) · 부직포로 만든 것(제11부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 참조)

(3) 일부분이 방직용 섬유직물인 고무로 만든 것으로서 고무가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것
위 (1) · (2) · (3)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에는 케이프(cape) · 앞치마 · 기저귀 · 땀받이 · 턱받이 · 벨트와 코르셋벨트(corset-belt)를 포함한다.

다음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제61류나 제62류)

(b)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c) 제65류의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소호해설]

소호 제4015.12호

의료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는 장갑은 환자와 사용자를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방수성과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는 일회용으로 포장된 멸균 장갑이나 벌크형태의 비멸균 장갑이다. 이들 장갑은 또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과학 · 의학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오염된 의료물질 취급에도 사용할 수 있다.

40.16 -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 기타

4016.91 -- 바닥깔개와 매트

4016.92 -- 지우개

4016.93 --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 그 밖의 실(seal)

4016.94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 상관없다)

4016.95 -- 그 밖의 공기주입식 제품

4016.99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제품
- (2) 바닥깔개와 매트[욕실용 매트를 포함하며 고무판 · 고무시트를 절단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매트로서 표면가공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제4008호 해설 참조)
- (3) 지우개
- (4)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 (5) 보트펜더(boat fender)나 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 상관없다)
- (6) 공기 압축식 매트리스 · 베개 · 쿠션과 그 밖의 공기주입식 제품(제4014호와 제6306호의 것을 **제외한다**) ; 물 매트리스
- (7) 고무 밴드 ; 담배쌈지 ; 일부(日附 : date) 스탬프용 문자와 그 유사품
- (8) 병마개와 병에 사용되는 링
- (9) 펌프로터(pump rotor) · 몰드(mould) ; 착유기용 고무라이너 ; 탭(tap) · 콕(cock) · 밸브(valve)와 이와 유사한 용품 ;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 (10) 자동차용의 새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 · 흡받기 · 페달커버 · 자전거용의 흡받이 플랩(mudguard-flap) ·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 · 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절단한 판 · 시트 · 스트립과 밀링(milling) · 선반가공 · 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이나 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제품

(12) 이너튜브(inner tube) 수리용 패치(patch)로서 가장자리가 사각으로 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과 그 밖의 모양 것으로서 성형·절단이나 연마 가공으로 제조한 것. 이들 물품은 대개 가황한 고무로 보강하고(backing) 그 위에 자기가황성(self-vulcanising) 고무를 적층된다. 또한 직물과 고무를 적층물로 되어 있는 패치에 대하여는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머리 부분이 고무로 된 망치

(14) 소형의 흡입훅(suction hook)·식탁깔개·개수대 마개·개수대 플런저(plunger)·문 버팀쇠(doorstop)·가구의 다리용 고무 발과 그 밖의 가정용품

다음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로서 **제11부**에 해당하는 것(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 참조)과 고무실을 결합한 방직용 재료로부터 만든 것 (**제11부**)

(b)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c) **제65류**의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d)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 만든 베이스·손잡이·진공레버로 구성된 진공컵 홀더(흡인그립)와 고무 디스크(**제15부**)

(e) 고무로 만든 보트와 래프트(raft)(**제89류**)

(f)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류**)

(g) **제9404호**의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의 매트리스·베개와 쿠션[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내부에 셀룰러 고무를 부착시킨 전기식 베드워밍.bed-warming) 패드를 포함한다]

(h) **제95류**의 완구·게임·운동용구와 그 부분품

(ij) **제96류**의 일부인·봉합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수동식의 것과 그 밖의 제품

40.17 - 각종 모양의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제품

경질(硬質 : hard) 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는 고무를 다량(100 파트 고무당 15 파트 초과)의 결합황으로 가황하여 얻는다. 또한 경질(硬質) 고무는 안료와 고수준의 충전제[예: 석탄·점토와 실리카(silica)]를 함유하기도 한다. 충전제·안료와 셀룰러(cellular) 구조가 없는 경질(硬質 : hard) 고무는 단단하고 흑갈색(때로는 적색) 재료이며 비교적 구부러지지 않고 비탄력적이어서 성형·재단·천공·선반가공·연마 등의 가공을 할 수 있다. 연마할 경우 고도의 광택이 나는 경질(硬質) 고무가 많다.

이 호에는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양의 경질(硬質) 고무(셀룰러성의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그 밖의 류에 분류하지 않는 모든 경질(硬質) 고무도 분류하며 배트(vat)·통·관(tubing)제품·칼자루·손잡이·그립핸들(grip-handle)과 이와 유사한 물품과 위생용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16부 기계·전기용품이나 그 부분품(여러 가지의 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질(硬質) 고무로 만든 것
- (b) 차량·항공기 등에 사용하는 경질(硬質) 고무로 만든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하는 것
- (c) 제90류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와 그 밖의 기기
- (d) 악기와 그 부분품과 그 부속품(제92류)
- (e) 개머리받침대판(butt plate)과 그 밖의 총포의 부분품(제93류)
- (f) 제94류의 가구·조명기구와 그 밖의 물품
- (g) 완구·게임·운동용구(제95류)
- (h) 제96류의 브러시와 그 밖의 물품

제 8 부

원피·가족·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생 원피의 페어링(paring)이나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 나. 제0505호나 제6701호의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
 - 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 것,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제43류). 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 마속(馬屬)동물, 면양이나 어린 양[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은 제외한다], 염소(예멘·몽고·티베트 염소는 제외한다), 돼지[페카리(peccary)를 포함한다], 샤무아(chamois), 가젤(gazelle),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순록, 엘크(elk), 사슴, 로벅(roebuck), 개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제41류로 분류한다.
2. 가. 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는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유연처리된(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 원피는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로 분류될 수 있다)
 - 나. 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에서 “크러스트”는 재유연처리된 원피와 건조하기 전에 색을 입히거나 기름을 바른 원피를 포함한다.
3. 이 표에서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란 제4115호의 물품만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I) **동물의 원피(모양이 큰 네발짐승의 원피)와 그 밖의 원피(깃털이나 솜털을 가진 새의 가죽과 모피는 제외한다)(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 이들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1호다목과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의 해설에서 규정한 동물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도 포함한다.

원피는 유연처리 전에 일련의 준비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알카리 용액(원피를 부드럽게 해주고 보존성을 위하여 사용한 염을 제거해주는)을 침투시키고 탈모와 탈육[“플레싱(fleshing)”]가공을 거친 후 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석회와 그 밖의 잔존물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물로 세척한다.

또한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는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 포함한다]를 거친 털을 제거한 원피를 포함한다. 그러한 처리는 스플릿(splitting) 공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원피를 안정시켜 주며 일시적으로 부패를 막아준다. 이러한 처리를 거친 원피는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적인 유연처리가 요구되며 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의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되거나 그 이상의 추가가공을 한 원피는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의해 이 류에서 **제외한다**.

(II) **유연처리되거나 크러스트(crust) 처리되었으나 그 이상 추가 가공되지 않은 원피(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 유연처리공정은 원피의 부패를 방지하게 해주며 물에 대한 불침투성을 증대시킨다. 탄닌(tannin)은 원피구조에 침투하여 콜라겐과 교차결합을 형성한다. 이것은 비가역 화학반응(irreversible chemical reaction)으로서 물품이 열·빛·땀으로부터 안정성을 갖도록 해주며 원피를 모양내기 쉽고 사용하기 좋게 해준다.

그 다음 단계로 "식물성 유연처리(vegetable tanned)"[특정 목재·원피·나뭇잎 등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을 함유하는 목욕통 내에서], "광물성 유연처리(mineral tanned)" [크로뮴염·철염·백반(白礬 : alum) 등의 광물성 염으로]하거나 "화학적 유연처리(chemically tanned)"(포름알데히드나 특정 합성화학약품으로)를 거치는데 때로는 이러한 공정들을 조합하여 처리하는 때도 있다. 백반과 염의 혼합물로서 중후한 가죽을 유연처리하는 방법을 **헝가리 공법(Hungarian dressing)**이라고 하며, **백반(白礬 : alum)**으로 유연처리를 할 때는 염·백반(白礬)·알의 노른자위·밀가루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백반(白礬)으로 유연처리 된 가죽은 주로 장갑·의복과 신발 제조에 쓰인다.

유연처리 되거나 유연처리 이상의 추가 가공된 원피는 상거래에서 "**가죽(leather)**"으로 알려져 있다. 유연처리 이후 건조된 가죽은 "**크러스트(crust)**" 나 "**크러스트 레더(crust leather)**"으로 알려져 있다. 크러스트 처리 중에, 크러스트를 매끄럽게 하고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액이나 기름이 첨가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원피는 건조 전에 재유연처리 되거나 침수(예: 드럼통 속)에 의해 염색될 수 있다.

새미가죽(chamois leather)[조합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기 위해 유성 유연처리와 드레스 가공된 면양과 어린양의 원피는 **제4114호**에 규정하고 있다.

(III) **유연처리(tanning)나 크러스트 처리(crusting) 후에 그 이상 가공한 가죽(제4107호·제4112호·제4113호).**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 후, 원피 표면의 불균질을 없애고 좀 더 유연하고 방수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종종 부가적인 가공["무두질 하는 것(currying)"]을 거친다. 이러한 추가 공정은 표면을 유연(softening)·신장(stretching)·박연(thinning)·타연(beatting)·경화(hardening) 시키는 과정과 기름으로 "침지(stuffing)" 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공정을 거친 가죽은 그 이상의 드레스 가공이나 완성가공 공정을 거치는 것도 있다. 즉, 다른 종류의 가죽을 모조하기 위한 표면 물감이나 도료의 도포, 은면가공이나 각인을 하거나 스웨이드(suède) 상태나 벨벳(velvet) 상태로 하기 위해 가죽 내측면(때로는 은면)을 사이징·윤택·연마[버핑(buffing)]처리하거나 왁스처리·흑염(blacking)·윤골화(smoothing) [글레이징(glazing)]·광택처리(satin finishing)·날염(printing) 등의 공정을 거친다.

파치먼트 가공을 한 가죽(parchment-dressed leather)은 원피를 유연처리 한 것이 아니라 원피의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처리단계를 거친 것이다. 이 원피를 유연화·털을 제거·탈육·세척하고 프레임으로 신장시킨 후 백악(whiting)과 소다나 소석회(消石灰)를 함유하는 페이스트(paste)로 도장하고 필요한 두께로 깎아 부석으로 연마하여 최종적으로 아교와 전분으로 드레스 가공을 한다.

"벨럼(vellum)"이라고 불리는 고급품질의 가죽은 어린 소의 원피로 제조한다. 이러한 고급 품질의 가죽은 중요서류나 책의 표지와 드럼피(drum-skin) 등으로 사용한다. 두꺼운 원피(즉, 몸집이 큰 소의 것이 보통이다)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 가공하여 ["로하이드(rawhide)"로 알려져 있다] 기계부분품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구, 여행용구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 (IV) **새미가죽(chamois leather) ;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제4114호)**. 제4114호는 특별히 호의 표제에서 명명된 가죽과 특정 마무리 공정에 의해 생산된 가죽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새미가죽(chamois leather)[조합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기 위해 기름으로 유연처리되고 드레스 가공된 면양과 어린 양의 원피를 포함하며 ;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나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그리고 금속 가루나 금속 박(箔 : foil)으로 도포한 가죽[**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 (V)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한 콤포지션(접착) 레더[composition (bonded) leather](제4115호)**
- (VI) **가죽과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이 호는 원피나 모피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는 포함하지 않는다.

원피와 가죽은 전신(원피와 가죽의 모양은 동물의 윤곽을 지니고 있으나, 머리와 다리부분의 원피가 제거된 것도 있다)의 모양이든 일부분[예: 사이드(side)·숄더(shoulder)·버트(butt)·밴드(bend)·벨리(belly)·취크(cheek)]의 모양이든 스트립(strip)모양의 것이든 시트(sheet)모양의 것이든 모두 이 류에 분류하나 ; 특별한 모양으로 절단한 가죽은 다른 류, 특히 **제42류**나 **제64류**의 제품으로 간주한다.

스플릿(split)한 원피와 가죽은 각각 스플릿(split)되기 전의 전신의 원피나 가죽을 분류하는 동일 호에 분류한다. 스플리팅(splitting)은 원피를 둘 이상의 층으로 수평적으로 나누는 과정이며 유연처리단계를 전후하여 이루어진다. 스플리팅의 목적은 가공 처리를 위하여 두께를 보다 고르게 하고 그리하여 보다 균질한 최종 가죽을 얻는데 있다.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으로 알려져 있는 원피의 바깥쪽 즉 그레인층(grain layer)은 원피를 엔드리스(endless) 밴드 나이프(band-knife)에 통과시켜 평평하게 함으로써 수밀리미터까지의 정확도를 갖도록 한 것이다 ; “플레시 스플릿(flesh split)”으로 알려져 있는 바닥 층은 모양이나 두께가 일정치 않다. 물소의 것과 같이 예외적으로 두꺼운 원피로부터는 여러 개의 층이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중간층은 바깥층에 비하여 구조가 약하다.

41.01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101.50 -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101.9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즉, 제0102호의 동물, 제0102호 해설 참조)나 마속(馬屬)동물(말·노새·당나귀·얼룩말 등)의 원피(털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원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띤다) 일시적으로 보존처리를 위하여 염장·건조·석회처리·산(酸)처리나 단기간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 할 수 있다. 이들 원피는 세척·스플릿(split)·스크랩(scrap)이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 포함한다]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 한 것과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원피(hide and skin)는 **건식 염장시키거나(dry salted)** 염수를 사용하여 **습식 염장 시킬(wet salted)** 수 있다. 원피의 건식염장과정에서는 오손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다른 물질을 첨가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때로는 황산나트륨을 포함하여 일종의 점토를 섞는다.

원피(hide)는 염장 후 곧 **건조시키거나(dried)** 첨가적 처리방식을 통해 **건조시킬 수 있다.** 건조시키는 동안 원피는 보통 살충제·소독제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처리된다.

원피(hide and skin)를 석회수에 침수시키거나 소석회를 함유한 연고를 도장하여 **석회가공한다(limed).** 이 석회가공은 털을 제거하는 것을 촉진시키거나 원피의 보존을 돕는다.

원피(hide and skin)는 소금을 첨가한 염산·황산이나 그 밖의 특정 화학약품의 묽은 용액에 침수시켜 **절인다(pickled).** 이 공정은 원피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의 껍질(skin)(**제0206호나 제0210호**)(단, 조리된 것은 제1602호에 분류한다)

(b) 원피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41.02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털을 제거한 것

4102.21 -- 산처리한 것

4102.29 -- 기타

이 호에는 털(wool)이 있거나 털이 없는 것에 상관없이 면양이나 어린양의 원피를 분류한다. 다만, 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Persian)나 이와 유사한 새끼양[즉, 카라쿨(Caracul)·페르시아(Persian) 양과 유사한 종류의 새끼양이면서도 세계 각국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인도·중국·몽고·티벳 새끼양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제외한다.**

이러한 원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띤다) 일시적으로 보존처리를 위하여 염장·건조·석회처리·산(酸)처리나 단기간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다(제4101호 해설 참조). 이들 원피는 세척·스플릿(split)·스크랩(scrap)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 부분적인 유연처리되거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 포함한다]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되거나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과 더 이상 가공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조리되지 않은 식용 동물의 껍질(skin)(**제0206호나 제0210호**)(단, 조리된 것은 제1602호에 분류한다)

(b) 원피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41.03 - 그 밖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 - 파충류의 원피

4103.30 - 돼지의 원피

4103.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A) 털(hair)이 없거나 털을 제거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1호나 **제4102호**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새의 깃털과 솜털이 제거된 새의 가죽 · 어류의 껍질 · 악어의 가죽 · 털을 제거한 염소(예멘 · 몽고 · 티베트의 염소를 포함한다)의 가죽을 포함한다.

(B)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다음 동물의 것

- (1) 염소(예멘염소 · 몽고염소 · 티베트염소는 **제외한다**)
- (2) 돼지[페카리(peccary)를 포함한다]
- (3) 샐미(chamois) · 가젤(gazelle) ·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 (4) 엘크(elk) · 순록 · 로벅(roebuck) · 그 밖의 사슴류
- (5) 개

이러한 원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띤다) 염장 · 건조 · 석회처리 · 산(酸)처리나 단기간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다(제4101호 해설 참조). 이들 원피는 세척 · 스플릿(split) · 스크랩(scrap)이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 포함한다]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 한 것과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a) 조리되지 않은 식용 동물의 껍질(skin)(**제2류**)나 식용 어류의 피(皮)(**제3류**)(단, 조리된 것은 **제16류**에 분류한다)
- (b) 원피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 (c) **제0505호**나 **제6701호**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새의 가죽과 그 부분

41.04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04.19 -- 기타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04.49 -- 기타

이 호에는 유연처리하거나 크러스트처리한(crusted) 털이 제거된(dehaired)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 equine)동물의 원피를 분류하나 그 이상 가공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에 것을 **제외한다**.

- (a)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가죽을 포함한다](제4114호)
- (b) 유연처리되거나 크러스트(crust) 처리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 (c)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제43류)

41.05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5.3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이 호에는 털(wool)이 없는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교배종의 면양과 염소의 것도 포함한다)로서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것을 분류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분류하지 않는다(이 류의 총설 참조).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은 염소의 가죽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며 또한 보다 불균질한 표피로 되어있다.

면양원피도 백반(白礬 : alum)으로 유연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이 류 총설 참조).

면양원피의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을 유연처리한 것을 “스카이버(skiver)”라 하며 “배질(basil)”이라는 것은 면양원피를 식물성 유연처리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제4114호)
- (b)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 (c)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피(皮 : skin)(제43류)

41.06 -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염소의 원피

4106.2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6.2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 돼지의 원피

4106.3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6.3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6.40 - 파충류의 원피

- 기타

4106.9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6.9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이 호에는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털(hair)이 없는 염소의 원피를 분류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류 총설 참조).

염소 가죽으로부터 면양 가죽을 구별하는 기준점은 제4105호의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염소피도 백반(白礬 : alum)으로 유연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털(hair)이 없거나 **털을 제거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4호와 제4105호에 언급된 동물의 것은 **제외한다**)를 제4104호와 제4105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이 류의 총설 참조)으로 제조한 원피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돼지·파충류(도마뱀·뱀·악어 등)·영양·캥거루·사슴·새미(chamois)·순록·엘크(elk)·코끼리·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하마·개·어류와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가죽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동물의 것을 **제외한다**.

(a)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제4114호**)

(b)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원피(**제43류**)

41.07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전신 가죽

4107.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107.1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07.19 -- 기타

-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107.9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07.99 -- 기타

이 호에는 털(hair)이 제거된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의 원피나 마속(馬屬)동물의 원피로서 파치먼트(parchment) 가공한 것이 분류하며 또한 유연처리(tanning)나 크러스트처리(crusting) 처리 후 그 이상 가공 처리한 가죽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소가죽이나 말가죽은 특히 견고하고 내구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이 때문에 이 가죽들은 일반적으로 신발바닥이나 기계벨트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신발바닥 가죽 : 강하게 롤링(hard-rolled)시키거나 다져서 만든다. 이것은 보통 식물성 유연처리를 하거나 혼합가공방식에 의한 유연처리를 하며 갈색을 띤다. 그러나 크롬 유연처리를 한(chrome-tanned) 것은 녹색이다.

기계벨트용 가죽 : 보통 황소의 등가죽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식물성 유연처리를 하며 견고하고 유연성이 있으면서 신장되지 않는 가죽을 만들기 위해 착유시키고 드레스 가공(dressed)을 한다.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가죽이나 말가죽은 장화나 단화용 갑피 제조용에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박스칼프(box-calf)”나 “윌로우 칼프(willow-calf)”로 알려진 가죽[송아지 가죽을 크롬 유연처리(chrome-tanned)나 혼합가공방법에 의해 유연처리된 유색의 광택 있는 가죽] 등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새미가죽(chamois leather)[(조합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과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제4114호**)

(b)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드레스 가공한(dressed)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제43류**)

[41.08]

[41.09]

[41.10]

[41.11]

41.12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털(wool)이 없는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교배종의 면양과 염소의 것도 포함한다)로 파치먼트(parchment) 가공한 것과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 후 그 이상의 가공 처리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을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면양가죽이나 어린 양의 가죽은 염소의 가죽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며 또한 보다 불규칙한 조직으로 되어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새미가죽(chamois leather)[(조합비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과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제4114호**)
- (b) 가죽(leather)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 (c)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드레스 가공한(dressed)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skins)(**제43류**)

41.13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4113.10 - 염소의 가죽
- 4113.20 - 돼지의 가죽
- 4113.30 - 파충류의 가죽
- 4113.90 - 기타

이 호에는 털(hair)이 없는 염소(goat or kid)의 가죽으로서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 한 것과 염소의 가죽으로서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 처리한 것을 분류한다(이 류 총설 참조).

염소(goat) 가죽으로부터 면양 가죽을 구별하는 특성은 제4112호의 해설을 참조한다.

염소(goat or kid)의 원피는 “백반(白礬)으로 유연처리(alum tanned)” 하는 경우가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털이 없거나 털을 제거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7호와 제4112호에 제시한 동물의 것은 제외한다)를 제4107호와 제4112호에서 설명한 방법(이 류의 총설 참조)으로 제조한 원피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돼지·파충류(도마뱀·뱀·악어 등)·영양·캥거루·사슴·새미(chamois)·순록·엘크(elk)·코끼리·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하마·개·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죽을 분류한다(단,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상거래 관습상 “도우스킨(doeskin)”이라고 불리는 가죽은 스플릿(split)된 면양의 피(skin)를 포르말데히드나 기름으로 유연 가공하여 만든 세척 가능한 가죽으로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112호와 제4114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과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제4114호)
- (b) 가죽(leather)의 패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 (c)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드레스 가공(dressed) 처리한 원피(hide and skin)(제43류)

**41.14 -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
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 -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4114.20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I)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이란 원피를 가열하거나 대기 중에 노출하여 건조시킨 후 물고기 기름이나 동물 기름으로 반복하여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을 하고 잉여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칼리 용액에 세척한 것이다. 이 가죽의 표면은 부석(pumice)이나 다른 연마제로 보풀(괴깅)이 일게 하여 세척하거나 드레스 처리(dressed)된다. 보통 이러한 처리방법으로 가공되는 가죽은 은면을 보풀가공(frizing)을 통해 제거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플래쉬 스플릿(flesh split)으로 만들어진다.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은 유연성이 있고 황색을 띄며(염색되면 예외) 세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대개 장갑이나 부드러운 가죽 제품용으로 사용한다. 비교적 큰 동물(예: 사슴·황소 등)의 가죽을 새미 가공한 것은 의류·마구(馬具 : harness)나 일부 공업용 용도에 사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로지 기름만 사용하여 얻은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은 때로는 전체 오일 새미가죽(full oil chamois)으로 불릴 때도 있다.

황색의 새미(chamois)가공을 한 가죽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백색의 세탁 가능한 가죽은 포름알데히드로 부분적인 유연처리를 한 후 앞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은 기름으로 유연처리를 하여 얻어지며 콤비네이션 새미(combination chamois)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역시 이 호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세탁가능한 가죽(예: 백반과 포름알데히드로 유연처리한 것)과 다른 공정으로 충분히 유연처리 후 단순히 기름으로 절이는 가공만 한 가죽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II)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와 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

이 그룹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난다.

여기에 사용한 바니시(vernish)나 래커(lacquer)는 색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주성분은 다음과 같다.

- (a) 식물성 건성유(일반적으로 아마인유) ;
- (b) 셀룰로오스유도체[예: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
- (c) 합성물품(열가소성 수지인지에 상관없다) , 주로 폴리우레탄

가죽에 사용한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는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이나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로 만들어진다.

이들 그룹에 속하는 물품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피(악어·도마뱀 등)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도드라진 무늬를 새기거나 인위적으로 압착해서 무늬를 넣거나 주름 가공하거나 도톰도톰하게 가공한다. 그러나 외관은 거울과 같이 광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복한 것과 시트(sheet)의 두께는 0.15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에서는 가죽에 금속성 광택을 부여하기 위해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식물성 건성유(금속처리한 인조가죽)와 같은 결합제로 한 안료[운모·실리카(silica)나 이와 유사한 플레이크(flake)를 포함한다]로 조성된 페인트나 래커(lacquer)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도 포함한다.

- (2)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상거래에서는 **페이턴트 도포 가죽(patent coated leather)**으로도 알려져 있다] : 두께가 0.15mm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미만인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를 피복한 **가죽**으로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의 표면이 거울같이 광택이 나는 것(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가죽으로서 시트의 두께가 0.15mm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이상의 것은 **제39류**에 해당한다).
- (3)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금속가루나 금속 박(箔 : foil)(예: 금·은·청동·알루미늄)으로 도포한 가죽]

그러나 이 호에서는 바니시(vernish) 되거나 메탈라이즈(metallised)된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는 **제외한다(제4115호)**.

41.15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115.20 -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I)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이 그룹에는 천연 가죽이나 가죽 섬유를 기본 재료로 한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만을 분류한다. 따라서 천연 가죽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는, 즉, 플라스틱(제39류)·고무(제40류)·종이와 판지(제48류)나 도포된 직물(제59류) 등으로 만든 모조 가죽은 제외한다.

“접착가죽(bonded leather)”이라고도 불리는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는 여러 공정으로 제조된다.

- (1) 글루(glue)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웨이스트(waste)의 조각을 응집시켜 만든다.
- (2) 결합제없이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여 응집시켜서 만든다.
- (3)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를 종이와 같은 결합제없이 뜨거운 물속에서 가열하여 얇은 섬유상이 되도록 분해하여 만들며 ; 이렇게 해서 생긴 펄프는 체질·롤링(rolling)과 광택가공을 거쳐 판 모양으로 성형된다.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는 염색·부조(浮彫 : embossed)·광택·그레인(grained)이나 스탬핑(stamped)하여 탄화규소나 금강사로 갈아서 스웨이드(suede) 처리를 하고 바니시(varnished)나 메탈라이즈드(metallised) 가공을 하여 완성된다.

이러한 공정을 거친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는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strip) 모양으로 된 것은 롤(roll) 모양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은 다른 류에 분류한다(특히 제42류).

(II)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가죽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긴 가죽[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나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 한 가죽도 포함한다]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로서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나 아교 등의 제조용에 적합한 것이나 비료로 사용하는 것
- (2) 본래의 목적인 용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데도 가죽으로서 쓸모가 없는 낡은 가죽제품
- (3) 비료로 사용하거나 인조스웨이드(artificial suède)·콤포지션 플로링(composition flooring)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가죽의 연마와 기모공정에서 생긴 웨이스트(waste)]
- (4) 스웨드포(suèded fabric)를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공업의 충전제로 사용하는 가죽의 가루[가죽 웨이스트(waste)를 뺀아서 제조한다]

가죽 물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가죽 조각이나 낡은 가죽제품(예: 오래된 기계벨트)은 적합한 호(제4107호나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에 가죽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원피의 패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 (b)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
-

제 4 2 류

가족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가족”은 새미가족(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족(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나 이와 유사한 살균한 복합재(제3006호)
 - 나.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외면에 모피나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 병어리장갑은 제외한다](제4303호나 제4304호)
 - 다.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
 - 라. 제64류의 물품
 - 마. 제65류의 모자나 그 부분품
 - 바. 제6602호의 채찍·승마용 채찍이나 그 밖의 물품
 - 사. 커프링크(cuff-link)·팔찌나 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鎧子)·비트·구리로 만든 장식품·버클과 같은 마구용 용구와 장식용품(주로 제15부)
 - 자. 현과 드림이나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족과 그 밖의 악기 부분품(제9209호)
 -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타. 제9606호의 단추,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스냅파스너(snap-fastener), 프레스스터드(press-stud), 단추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3. 가. 제4202호에서는 주 제2호의 것 외에 다음도 제외한다.
 -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한정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923호)
 - 2) 조물 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
- 나. 제4202호와 제4203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일부분이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된 것은 비록 이들 물품의 일부분이 부착구나 장식 이상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그 일부분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로 분류한다.
4. 제4203호에서 “의류와 의류 부속품”이란 특히 장갑과 병어리장갑(운동용·보호용을 포함한다), 앞치마와 그 밖의 보호용 의류, 바지 벨빙, 의류용 벨트, 띠, 손목끈[휴대용 시곗줄(제9113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주로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제품을 분류되며 ; 다만, 제4201호와 제4202호에는 다른 재료로 만들었으나 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또한 거트(gut)·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방광·건(腱)의 제품까지도 포함한다.

가죽

이 류에서 “가죽”은 이 류의 주 제1호에 정의하여 있다. “가죽(leather)”이라는 용어에는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즉, 제4114호에 기술한 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가죽제품은 **다른 류**에도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들은 이후 각 호의 해설에 언급하였다.

42.01 -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모피·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용 장착물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馬具 : harness)(고삐·굴레와 고삐줄을 포함한다)·마(馬)용의 무릎받이(knee pad)·눈가리개와 부츠·서커스용 동물의 장식용 마구(trapping)·동물용 재갈(muzzle)·개나 고양이용 칼라나 이끄는 줄이나 장식·안장용 깔개담요·안장용 쿠션 그리고 안장에 다는 주머니·특수형의 마용(馬用) 담요·견용(犬用) 코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따로 제시하는 등자(鑣子 : stirrup)·비트(bit)·구리로 만든 장식품·버클(buckle)과 같은 마구(馬具 : harness)와 마용(馬用) 장식품(일반적으로 **제 15부**), 그리고 서커스 동물용의 깃털과 같은 장식용구(이들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b) 어린이나 성인용 마구(馬具 : harness)(**제 3926호**·**제 4205호**·**제 6307호** 등)
- (c) **제 6602호**의 채찍·승마용 채찍과 그 밖의 제품

42.02 - 트렁크 · 슈트 케이스 · 화장품 케이스 · 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 서류가방 · 학생가방 · 안경케이스 · 쌍안경 케이스 · 사진기 케이스 · 악기 케이스 · 총 케이스 · 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 플라스틱의 시트(sheet) · 방직용 섬유 ·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 · 화장갑 · 배낭 · 핸드백 · 쇼핑백 · 돈주머니 · 지갑 · 지도용 케이스 · 담배 케이스 · 담배쌈지 · 공구가방 · 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 ·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 분갑 · 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트렁크 · 슈트 케이스 · 화장품 케이스 · 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 서류가방 · 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1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19 -- 기타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2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29 -- 기타

-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3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39 -- 기타

- 기타

4202.9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9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99 -- 기타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 앞 부분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이나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紙)(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가죽(leather)”이라는 용어에는 새미가죽(chamois leather)[조합이전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뒷 부분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노트케이스·필기용 케이스·펜케이스(pen-case)·티켓케이스·바늘케이스·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cigar-case)·파이프 케이스·공구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신발 넣는 상자·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사용한 부분품이 붙어 있는 경우 이들 부분품이 미미한 부착구나 미미한 장식 이상의 것일지라도 그 부분품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은으로 만든 프레임과 마노로 만든 고리가 붙어 있는 가죽핸드백은 이 호에 포함한다[이 류 제3호나목 참조].

“스포츠용 백(sports bag)”에는 골프백·짐(gym) 백·테니스 라켓 운반용 백·스키백과 낚시용 백을 포함한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jewellery box)”란 신변장식용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상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모양이나 한 개나 그 이상의 신변장식용품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여러 가지 크기의 덮개가 있는 유사한 용기[경첩(hinge)이나 잠금개(fastener)를 갖추고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포함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물로 안을 대고 있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는 신변장식용품의 모양의 것으로 제시하고 판매되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 가방(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이란 운송이나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insulated bag)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이 류의 주 제3호가목 1)에 규정한 쇼핑백[셀룰러(cellular) 플라스틱의 내부 면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플라스틱 외부 면으로 구성된 가방을 포함한다](제3923호)
- (b) 조물 재료의 물품(제4602호)
- (c)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면, 책 커버와 독서재킷·파일커버·서류용재킷(document-jaket)·압지철(blotting pad)·사진틀·사탕과자 상자·담배통·재떨이·도자제·유리 등으로 만든 플라스크(flask)와 전부나 대부분이 가죽·플라스틱 시트(sheet) 등으로 피복된 물품. 이러한 물품은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어졌거나 피복된 경우에는 제4205호에 분류하고 다른 재료로 된 경우에는 **다른 류**에 분류한다.
- (d) 망제품(제5608호)
- (e)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 (f) 공구상자나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일반적으로 제3926호나 7326호)
- (g) 칼·총검·단검이나 이와 유사한 허리에 차는 무기용의 칼집(제9307호)
- (h)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소호해설]

소호 제4202.11호·제4202.21호·제4202.31호와 제4202.91호

이들 소호에서 “외부 표면을 가죽으로 만든 것(with outer surface of leather)”이란 색상이나 광택이 변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죽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보통 두께가 0.15mm 미만)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의 박막(薄膜 : thin layer)으로 도포한 가죽을 포함한다.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와 제4202.39호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지갑·손가방·열쇠 케이스·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시가케이스(cigar-case)·파이프케이스·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

42.03 -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10 - 의류

- 장갑류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203.29 -- 기타

4203.30 - 벨트와 띠

4203.4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이 호에는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든 모든 의류와 그 부속품(아래 예외조항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코트·오바코트·장갑·병어리장갑[운동용이나 보호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소매·그 밖의 보호용 의류·멜빵·벨트·허리띠·띠·거들·넥타이·손목끈(wrist strap)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절단하여 한쪽 끝을 점점 가늘게 한 것으로서 벨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 분명한 가죽의 스트립(strip)도 포함한다.

가죽과 모피나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병어리장갑은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

장갑·병어리장갑을 제외하고는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의류나 그 부속품에 모피나 인조모피로 안을 붙인 것이거나 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외측에 단순한 장식의 정도 이상으로 사용한 것은 **제4303호나 제43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전열장치(electric heating element)를 가졌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의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사용한 부분품이 붙어 있는 경우 이들 부분품이 미미한 부착구나 미미한 장식 이상의 것일지라도 그 부분품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금으로 만든 버클(buckle)이 붙어 있는 가죽으로 만든 벨트는 이 호에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 물품도 **제외한다**.

- (a) 원피(skin), 특히, 면양피를 털(hair·wool)이 붙은 체로 유연처리한 가죽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제43류**)
- (b) 가죽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제 의류(**제61류나 제62류**)
- (c) **제64류**의 제품(예: 신발과 신발 부분품)
- (d)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
- (e) 커프링크(cuff-link)·팔찌·그 밖의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 (f) 시곗줄(**제9113호**)

- (g) 제95류의 물품[예: 크리켓(cricket)·하키 등의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정강이받이(protective equipment)와 같은 스포츠용구·펜싱마스크(fencing mask)·가슴받이(breast plate) 등의 스포츠장비](다만, 가죽으로 만든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용 장갑과 병어리장갑은 이 호에 분류한다)
- (h)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나 이들의 부분품·단추 블랭크(button blank)(제9606호)



[소호해설]

소호 제4203.21호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디자인한 장갑류(gloves, mittens and mitts,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sports)”에는 특히 스포츠용(예: 손을 보호하고 스틱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스하키 장갑과 권투 장갑)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기능적인 특징을 갖추도록 만든 장갑류를 포함한다(한 짝으로 판매되는지 한 켤레로 판매되는지에는 상관없다).

[42.04]

42.05 -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기계에 사용하는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팅(belting)[위어서 만든 벨팅(belting)을 포함한다] : 단면의 형상이 어떠한 상관없으며, 완제품이 벨트이든 일정한 길이로 만든 것이든 상관없다. 평판상의 가죽제 벨팅은 정선된 가죽의 스트립(strip)으로 양단을 연결이나 접착시킨 것이며, 원형 벨팅은 보통 스트립으로 제조하는데 두루 말고 접착시켜 원형 단면으로 만든다. 컨베이어용 버킷(bucket)을 포함한다.

제시 당시에 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트랜스미션(transmission)·컨베이어용 벨트(belt)나 벨팅(belting)은 실제로 장착여부에 관계없이 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예: 제16부).

- (2) 러그 스트랩(lug strap)·픽커(picker)·코밍레더(combing leather)·카드 클로싱 레더(card clothing leather)[그러나 핀이 달린 카드 클로싱(card clothing)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헬드스트랩(heald strap)과 그 밖의 섬유공업용의 가죽제품 ; 기어·개스킷(gasket)·와셔(washer)·벨브용 가죽·펌프나 프레스용 가죽·인쇄프레스용의 실린더슬리브(cylinder sleeve)와 선별기용 구멍 뚫린 가죽 ; 원피제 해머 ; 가스미터 격막과 제90류에 열거한 기기류나 가죽제의 그 밖의 부분품 ; 가죽제 튜브와 호스-파이핑(hose-piping)

이 호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수하물용 레이블(label) ; 면도기용 혁지 ; 장화용 끈 ; 하물 운반용 손잡이 ; 귀퉁이보강용 가죽[트렁크(trunk)·슈트 케이스(suit-case) 등에 사용하는 것] ; 속을 채우지 않은 푸우프케이스(pouffe case)[속을 채운 푸우프(pouffe)는 제9404호에 분류한다] ; 일반용의 가죽제 끈(제42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소아용이나 성인용의 마구(馬具 : harness) ; 일정한 길이의 대다리용 가죽 ; 가죽제 매트(제4201호에 분류하는 안장은 제외한다) ; 독서용 책커버 ; 압지철 ; 가죽제의 수통이나 염소가죽제의 수통과 그 밖의 용기[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전부 덮은 것이나 대부분 덮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제4202호에 열거된 용기와 유사하지 않은 것 ; 멜빵 부분품 ; 가죽으로 피복한 버클(buckle)·클라스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우산·양산과 지팡이용의 케이스·장식용 술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검의 장식용 매듭 ;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의 형상을 가졌거나 조립된 새미(chamois)가공을 한 가죽[특별한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았거나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으로 되지 않은 새미(chamois)가공을 한 가죽, 예를 들어 더스터(duster)용의 것은 제4114호에 분류한다] ; 녹피로 피복된 손톱 연마구 ;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제품(예: 의류) 형상으로 절단한 조각으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64류의 신발 부분품
- (b) 제6602호의 채찍·승마용 채찍과 그 밖의 물품
- (c) 인조의 꽃·인조의 잎·인조의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제6702호)
- (d) 커프링크(cuff-link)·팔찌·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품(제7117호)
- (e) 제94류의 물품(예: 가구·가구 부분품·조명기구)
- (f)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g) 제9606호의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등

42.06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 건(腱)의 제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세척하여 건조시킨 거트(gut)[특히 면양의 거트(gut)]를 스트립(strip) 모양으로 비틀어서 만든 캣거트(catgut). 캣거트(catgut)는 라켓(racket), 낚시도구와 기계류의 부분품 제조에 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외과용의 살균한 캣거트나 이와 유사한 외과용 살균 봉합제(제3006호)나 약기현용으로 포장하였거나 가공한 거트(제9209호)를 제외한다.

- (2)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피스(piece)나 그 밖의 형으로 절단한 골드비터 스킨(gold beater's skin)과 골드비터 스킨의 그 밖의 제품[골드비터 스킨은 양이나 그 밖의 반추동물 맹장으로 조제한 것이다]
 - (3) 담배주머니와 같은 방광으로 만든 제품 ; 기계용 벨팅(belting) · 기계벨팅용의 레이스 등으로 만든 건[腱(힘줄) : tendon]제품. 쪼개진 천연의 거트를 접착제로 부착시켜 만든 “인조 (artificial)” 거트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제 43 류

모피 ·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 · 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제0505호나 제6701호)
 - 나. 제41류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생 원피(제41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 다. 가죽과 모피,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과 방어리장갑(제4203호)
 - 라. 제64류의 물품
 - 마.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바. 제95류의 물품(예: 완구 · 게임용구 · 운동용구)
3. 제4303호는 다른 재료를 더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 의류 · 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그 밖의 제품 모양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4.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주 제2호의 것과 모피 ·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은 제4303호나 제4304호로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 · 동물의 털 · 그 밖의 섬유를 가죽 · 식물 · 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나 제6001호).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생 모피(raw furskin)[**제4101호 · 제4102호 · 제4103호**의 생원피(raw hide and skin)를 **제외한다**]
- (2)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드레스 가공한 원피(hide and skin)(조합여부를 불문한다)
- (3) 모피제의 의류, 의류 부속품과 그 밖의 제품(제4303호의 해설에서 열거된 제외규정은 제외한다)
- (4) 인조모피와 그 제품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새의 가죽과 와 그 부분은 모피(furskin)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 제0505호나 제6701호에 분류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 *

제4301호부터 제4303호까지는 현재 멸종의 위협에 직면해 있거나 표본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한 멸종하게 될지도 모를 일부 야생동물의 모피와 모피의 제품을 분류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동물의 종은 야생동식물군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1973년 협약」(워싱턴 협약) 부속서에 열거하였다.

43.01 -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 4301.1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 4301.3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브로드테일(Broadtail), 카라쿨(Caracul),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 4301.6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 4301.8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 4301.90 -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호에는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털을 제거하지 않은 모든 동물의 털과 원피[즉,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을 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 (a)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즉, 제0102호의 동물(제0102호의 해설 참조)]
- (b) 마속(馬屬)동물(말·노새·당나귀·얼룩말 등)
- (c) 면양과 어린 양[아스타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Persian)나 이와 유사한 어린 양과 인도·중국·몽고와 티베트의 어린 양을 **제외한다**]
아스타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과 페르시아(Persian)라는 명칭은 서로 유사한 종류의 어린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막연히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모피에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어린 양의 나이에 따라).
- (d) 염소(예멘 염소·몽고 염소·티베트 염소는 **제외한다**)
- (e) 돼지[페커리(peccary) 포함]
- (f) 새미(chamois)·가젤(gazelle)·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 (g) 엘크(elk)·순록·로벅(roebuck)·그 밖의 사슴류
- (h) 개

모피(furskin)는 천연상태의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면, 건조나 염장(습식·건식에 상관 없다)의 처리를 한 것도 원피로 간주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털이 뽑히거나 털이 깎여진 모피도 있다. 즉, 조모(coarse hair)를 뽑는다든가 벤 것이나 가죽 표면을 "플레쉬드(fleshed)" 하거나 굽어낸 것들이다.

원피상태의 모피의 조각과 부분(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 원피의 웨이트스트재료가 모피가공업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제0511호)**.

43.02 -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 -- 밍크의 것

4302.19 -- 기타

4302.2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302.3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털(hair·wool)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유연처리 한 것이거나 드레스 가공한 미조합된 원피(머리 부분·다리부분·꼬리 부분·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한다)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한 전신 원피로서 미조합과 특정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이거나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비록 직접 용도(예: 용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2)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 한(dressed) 모피나 그 부분품[드롭된(dropped) 가죽을 포함한다]을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사다리꼴·십자형으로 봉합한 조합물품

“드롭된(dropped) 모피” : 모피를 V형이나 W형의 스트립(strip)모양으로 잘라 길고 좁은 모피가 되도록 원순서대로 재 봉합한 것

유연처리는 가죽제조에 사용하는 것(제41류 총설 참조)과 유사한 방법으로 가죽 안쪽인 고기 부분(肉面 : flesh side)을 처리한다. 이와 같이 처리된 모피는 대개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점에서 원 모피와 구별된다. 또한 털(hair·wool)의 부분은 그 외관을 개선하거나 고급모피로 모조하기 위해 표백·혼합·“토평(topping)”(브러시에 의해 표면을 염색하는 것)·염색·빳질·장식과 광택내기(인조수지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제4301호에서 제외된 원피(조랑말 원피·송아지 원피·면양 원피와 같은 것)로서 털(hair·wool)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한 모피나 모피조각의 조합물은 둘 이상의 모피나 모피조각으로 이루어진 반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부착 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사다리꼴·십자형으로 봉합되어 있다. 이 반제품(semi-manufacture)은 이후의 추가적인 가공에 사용된다.

그러한 모피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판(plate) 모양·매트(mat) 모양·스트립(strip) 모양**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조합한 것
- (2) **십자형** : 십자형으로 조립한 것
- (3) **주머니형[라이닝(lining)이나 로브(robe)형]** : 사다리꼴로 조합한 것이나 때로는 관(管)모양으로 봉합한 것

제8부
43.02

모피코트나 모피재킷 제조용 보디(body)도 이 호에 해당된다. 보디(body)는 대개 서로 독립된 세 개의 모피를 조합한 것이며 이 중 한 개는 밑변(후면은 나중에 절단된다)이 길고 굽은 이등변 사다리꼴로 다른 두 개는 직사각형(앞면과 소매는 나중에 절단된다)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a) 의류나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나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조잡한 모양의 모피와 모피의 조합품(머리 부분·발 부분·꼬리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한다)과 곧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단계의 장식용(trimming)과 적당한 길이로 자르기만 하면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모피와 그 조합품 (**제4303호**)
- (b) 모피와 그 밖의 재료(예: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 직물로 결합된 꼬리)로 된 조합품(예를 들어 galloonage) (**제4303호**)

43.03 - 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303.90 - 기타

이 호에는 아래의 예외를 **제외하고** 다음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 · 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머프(muff) · 모피목도리(stole) · 타이(tie) · 칼라(collar) 등]을 분류한다.

(A) 모피

(B) 모피로 안을 댄 그 밖의 재료

(C) 모피를 외측에다 붙인 그 밖의 재료[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류에 붙은 모피로서 예를 들면, 칼라와 옷단[케이프(cape)나 볼레로(bolero)를 만드는데 칼라(collar)나 옷단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너무 크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커프(cuff) · 포켓(pocket) · 스커트(skirt) · 코트(coat) 등의 단에 사용할 정도의 것은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호에는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하고 그 밖의 재료(예: galloonage)를 첨가(그 밖의 재료를 첨가함으로써 모피 조합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하여 조합한 것도 포함한다.

더욱이 이 호에는 모피(부분품을 포함한다)로 만든 것이거나 모피가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만든 그 밖의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담요 · 덮는 포 · 속을 채우지 않은 푸프(pouffe) · 케이스 · 핸드백 · 게임용 구백 · 배낭과 기계용이나 공업용의 제품과 그 부속품 [예: 연마용 캡과 도장이나 장식용에 사용하는 롤러용 슬리브(sleeve)]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이 것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앞 부분의 물품

(b) 가죽과 모피로 만든 장갑 · 병어리장갑(**제4203호**)(전부가 모피로 된 장갑은 이 호에 분류한다)

(c) **제64류**의 물품

(d)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

(e) **제95류**의 물품(예: 완구 · 게임용구 · 스포츠용구)

43.04 - 인조모피와 그 제품

이 호의 “인조모피(artificial fur)”란 양모,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섬유[셔닐사(chenille yarn) 모양의 섬유도 포함한다]를 가죽·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에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인조모피를 말하지만 ; 그러나 이 규정이 “모피직물(fur fabric)”(일반적으로 **제5801호**나 **제6001호**)로 가끔 알려진 직조나 편직된 롱파일(long pile) 직물이나 모피에다 다른 것의 동물의 털을 첨가한 “포인트(pointed)”된 모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호에는 인조모피로 만든 조각과 제품(의류와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단, 이와 유사한 모피제품에 관해 제4303호의 해설에 기술한 조건은 이 호의 제품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죽이나 끈(cord)의 심(core)에 모피의 섬유나 털의 섬유를 조합하여 얻은 꼬리 모양의 인조모피도 포함한다. 그러나 동물의 수많은 진짜 꼬리나 모피의 웨이스트(waste)를 모아 심으로 짠 꼬리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제4303호)**.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 4 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칩 모양, 대패밥,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 의약품, 살충용,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목재(제1211호)
 - 나. 주로 편조하는 데 사용되는 대나무나 목질성인 그 밖의 재료(미가공 상태로 한정하며, 쪄거나 세로 방향으로 톱질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1401호)
 - 다. 칩 모양, 대패밥,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으로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
 - 라. 활성탄(제3802호)
 - 마. 제4202호의 물품
 - 바. 제46류의 물품
 - 사.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 아. 제66류의 물품[예: 산류(傘類)·지팡이와 이들의 부분품]
 - 자. 제6808호의 물품
 - 차.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 카. 제16부나 제17부의 물품(예: 기계 부분품, 케이스, 커버, 기기용 캐비닛, 차량물품)
 - 타. 제18부의 물품(예: 클럭(clock) 케이스, 악기와 이들의 부분품)
 - 파. 화기의 부분품(제9305호)
 - 하.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
 -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 너. 제96류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류와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 그리고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03호의 제품용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는 제외한다)
 - 더.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란 화학적·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한 것은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밀도나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
4. 제4410호·제4411호·제4412호의 물품은 제4409호에서 규정한 모양으로 가공한 것, 굽은 것(curved), 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성형한 것,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9부
제44류

5. 제4417호는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을 제82류의 주 제1호의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위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 각 호에 열거된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그 밖의 재료가 포함된다.



소호주:

1. 소호 제4401.31호에서 “목재 펠릿(pellet)”이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이다.
2. 소호 제4401.32호에서 “목재 бри켓트(briquette)”이란 기계식 목재가공업, 가구 제조나 그 밖의 목재 변형 작업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이나 칩과 같은 부산물을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бри켓트(briquette)은 최소 횡단면 직경이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입방체·다면체·원통형이다.
3. 소호 제4407.13호에서 “에스-피-에프(S-P-F)”란 가문비나무, 소나무와 전나무의 혼합림에서 얻어진 목재로서, 각각의 종의 구성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것을 말한다.
4. 소호 제4407.14호에서 “헴퍼(Hem-fir)”란 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과 전나무(fir)의 혼합림에서 얻어진 목재로서, 각각의 종의 구성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것을 말한다.

국내주:

1.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카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mosia)·아코(Ako)·아란(Alan)·안드로바(Andiroba)·안닝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벤투(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중콩(Jongkong)·카풀(Kapur)·캠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케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쿨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라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쿠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쿨(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파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펠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페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톨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총설

이 류에는 미가공의 목재, 목재의 반제품과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 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1) 원목[벌채한 것·할재(割材: split)·거칠게 각을 뜬 것·나무껍질을 벗긴 것 등]과 뿔나무,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토막, 톱밥, 칩 모양, 알갱이 모양의 목재; 후프우드(hoopwood)·포울(pole) 등 말뚝류; 목탄;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케도용 목재받침목(일반적으로 제4401호부터 제4406호까지). 그러나 이 류에는 칩(chip) 모양, 대팻밥,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의 목재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제1211호)과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는 제외한다.

- (2) 톱질한 것 · 쪼갬질(chipped) · 평살(sliced)한 것 · 박피(peeled)한 것 · 대패질(planed)한 것 · 연마한 것 · 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 예를 들면, 핑거 조인트(finger-jointed)[즉,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각지 긴 손가락 모양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glue)로 접착시킨 것]와 같이 이음매로 끝을 이은 것과 연속적으로 조형된 목재(제4407호부터 제4409호까지).
- (3)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이와 유사한 목재, 섬유판, 적층 목재(laminated wood)와 고밀도화 목재(제4410호부터 제4413호까지).
- (4) 목제품(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과 이후 각 호의 해설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

목재와 플라스틱(plastic)의 층으로 구성되는 건축용 패널(panel)은 대개 이 류에 분류한다. 이들 패널(panel)의 분류는 용도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외부표면에 의해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붕 · 벽 · 마루의 건축용 자재로 사용하는 건축용 패널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라는 외부층과 플라스틱 절연층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패널이 건축용 자재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목재의 견고성에 있으며 플라스틱은 보조적 절연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께에 상관없이 제4410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목재가 단순히 외부 플라스틱 표면의 지지물로만 작용되는 패널은 대부분 **제39류**에 분류한다.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제품과 함께 제시하는 유리 · 대리석 ·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시할 때의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목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완제 목제품을 분류하는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목재,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board), 섬유판, 적층 목재(laminated wood),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을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목재의 보존을 위한 처리에는 건조, 표면탄화, 프라이밍(priming)과 스톱핑(stopping), 크레오소트(creosote), 그 밖의 보존처리제[예: 콜타르(coal tar), 펜타클로로 페놀(pentachlorophenol)(ISO), 크로뮴성 비산구리(chromated copper arsenate), 암모니아성 비산구리(ammoniacal copper arsenate)]를 침투시킨 것 등이 있으며 ; 또한 페인트 · 착색 · 바니시(vernish)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은 페인팅, 착색, 보존 처리한 목재에 대해 특별히 분류하는 제4403호와 제4406호의 소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목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버드나무 가지(osier)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한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하고,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한다. 다만, 칩(chip) 모양이나 삭편(particle) 모양의 대나무 등의 물품[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섬유판 · 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대나무나 그 밖의 목질성의 제품[그 밖의 다른 류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 가구 · 그 밖의 제품을 **제외한다**]은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예: 제4410호와 제4411호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그에 상응한 물품이나 순수한 목재의 제품과 같이 이 류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소호해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 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속서에 게재한다.

44.01 - 땀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 땀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4401.11 -- 침엽수류

4401.12 -- 활엽수류

-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 -- 침엽수류

4401.22 -- 활엽수류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401.31 -- 목재 펠릿(pellet)

4401.32 -- 목재 브리켓(briquette)

4401.39 - 기타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401.41 -- 톱밥

4401.4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땀나무(fuel wood) : 일반적으로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1) 짧은 통나무 조각(일반적으로 나무껍질을 갖고 있다)

(2) 통나무를 쪼갠 것이나 목편(billet)

(3) 작은 가지·나무다발·거치른 봉(rod)·닝쿨줄기·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

(B) 칩(chip) 모양 목재·삭편(削片 : particle) 모양의 목재 : 목재를 기계에 의해 칩 모양(평평한 것·단단한 것·거칠게 각을 뜬 것)이나 삭편(削片) 모양(얇은 것과 유연한 것)으로 만들어 기계적 방법·화학적 방법·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의 결합에 의하여 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거나 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류의 주 제6호에 따라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대나무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둥근 모양이나 넷으로 쪼개진 펄프(pulp)목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03호).

(C) 톱밥(sawdust)[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D)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재목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 : 이러한 물질들은 특히 제지용 펄프(pulp) 제조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섬유판의 제조용과 연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제재소의 불합격품, 제조할 때 나온 웨이스트 ; 부서진 판자 ; 사용될 수 없는 낡은 상자 ; 나무껍질과 대팻밥[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응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구와 목공품을 제조할 때 생긴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사용한 염색용 목재와 유연용 목재, 나무 껍질. 또한 이 호는 건설과 해체 잔해로부터 분리되고 목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들보·판자·문의 형태로 분리되고 재사용에 적합한 목제품은 그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난로 불쏘시개용으로 만든 것으로서 수지나 그 밖의 재료를 도포한 목재와 목재 웨이스트(**제3606호**)
- (b) 펄프(pulp)용이나 성냥개비 제조용 통나무(**제4403호**). 이러한 물품은 연료용의 것과는 달리 엄격히 등급이 매겨져 있고 껍질을 벗긴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갈라지거나 쪼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았으며 마디나 갈라진 부분이 없다.
- (c) 체·칩박스(chip box)·약상자 등을 엮거나 만드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칩우드(chipwood)와 식초 제조용이나 액체 청정용에 적합한 대팻밥(**제4404호**)
- (d)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제4405호**)

44.02 -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402.20 - 셸(shell)이나 너트(nut)로 만든 것

4402.90 - 기타

목탄(wood charcoal)은 공기를 차단시켜 탄화시킴으로써 제조하며 이 호에는 블록(block) 모양·봉 모양·알갱이 모양·가루 모양의 것과 타르(tar)나 그 밖의 물질로 응결시켜 브리켓(briquette)·정제(tablet)·구(球) 모양과 같은 모양 등으로 만든 목탄을 분류한다.

목탄은 동물성이나 광물성의 탄소와는 달리 물보다 가볍고 조각에서는 나무의 결을 나타낸다.

코코넛(coconut)이나 그 밖의 식물성의 껍질을 탄화시켜 만든 이와 유사한 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제30류**에 규정한 의약품의 모양으로 만든 목탄
- (b) 향과 혼합하여 정제(tablet)나 그 밖의 모양으로 만든 목탄(**제3307호**)
- (c) 활성탄(**제3802호**)
- (d) 도화용(drawing) 목탄(목탄연필)(**제9609호**)

44.03 -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 4403.11 -- 침엽수류
- 4403.12 -- 활엽수류
 -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 4403.21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403.22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4403.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403.24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4403.25 -- 기타(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403.26 -- 기타
 -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 4403.4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
- 4403.42 -- 티크(Teak)
- 4403.49 -- 기타
 - 기타
- 4403.91 --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 4403.93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403.94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4403.95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403.96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4403.97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 것
- 4403.98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의 것
- 4403.99 -- 기타

이 호에는 벌채의 자연상태의 목재(가지를 친 경우가 많다)와 이러한 목재의 외피나 외피와 내피를 벗겨 내거나 거친 마디를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 최근에 생장한 필요없는 외층(변재)을 수송 경비의 절약과 부패 방지를 위해 제거해 버린 목재도 포함한다.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물품으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재용 목재 ; 전화·전신·전력 송전선용의 전주 ; 뽕죽하지 않고 쪼개지 않은 말뚝류·봉과 지주 ; 광산용 버팀기둥 ; 펄프(pulp)용 통나무(각재로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단판 등의 제조용의 둥근 통나무 ; 성냥개비·목제품 등의 제조용 통나무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는 사용하기 쉽도록 드로 나이프(draw knife)나 꺾질을 벗기는 기구로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낸 경우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때때로 이들 전봇대용의 목재에 페인트·착색한 것·바니시(vernish)를 칠하거나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물질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특수한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와 특정의 제작물[베니어(veneer)와 흡연용 파이프(pipe)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나무줄기(trunk of tree)로 만든 거칠게 각을 뜬 목재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나무줄기의 둥근 표면을 큰도끼·손도끼·거친 톱질로 편편하게 한 후 단면을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황삭한 조각재 모양으로 만들며 ; 거칠게 각을 뜬 목재는 거친 면이 있거나 나무껍질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되는 이면만을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하여 절삭한 하프스퀘어(half-square)된 목재도 이 호에 분류한다. 목재는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제재용으로 사용하거나, 지붕용 목재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목재[예: 티크(teak)]는 나무결을 따라서 쪼개거나 분할하여 각재로 만드는데 이러한 각재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지팡이·우산류·공구의 자루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목재 (**제4404호**)
- (b) 궤도용 받침목의 모양으로 절단한 목재(**제4406호**)
- (c) 판지(plank)·빔(beam) 등의 모양으로 절단한 목재(**제4407호나 제4418호**)



[소호해설]

소호 제4403.11호와 제4403.12호

소호 제4403.11호와 제4403.12호에는 장기간 보존의 목적으로 페인트·착색·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예: 콜타르·펜타클로로페놀(ISO)·크로뮴화 비산구리·암모니아성 비산구리]로 처리한 물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단순히 운송이나 저장기간 동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물질을 처리한 물품은 제외한다.

소호 제4403.21호·제4403.23호·제4403.25호·제4403.93호와 제4403.95호

이들 소호에서 횡단면의 최소치수는 목재의 윗쪽 끝[꼭대기(top)]에서 측정한 치수이다.

**44.04 -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툽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 · 산류(傘類) · 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
· 힘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 침엽수류

4404.20 - 활엽수류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후프우드(hoopwood) : 이것은 버드나무 · 개암나무 · 자작나무 등의 쪼개진 봉(rod)으로서 통의 테나 허들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껍질이 붙어있거나 거칠게 깎아진 것이든 간에) 후프우드는 일반적으로 다발 모양이나 코일(coil) 모양으로 묶여져 있다.

통에 부착시킬 때 서로 결합되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톱니 모양으로 끝에 금을 새긴 후프우드는 **제4416호**에 분류한다.

(2) 쪼갠 말뚝(split pole) : 이것은 수목의 줄기와 가지를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원예와 농업용의 지주와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이나 지붕용의 외가지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3) 뾰족하게 만든 말뚝류(울타리용 말뚝류를 포함한다) : 이것은 둥근 말뚝이나 쪼갠 말뚝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 것으로서 껍질을 벗겼거나 보존제(preservative)로 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으나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을 제외한다.

(4) 목재의 막대(stick)(거칠게 다듬은 것으로서 선반가공 · 힘 가공 · 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 지팡이 · 채찍(鞭 : whip) · 골프클럽의 자루 · 우산류 · 공구의 자루 · 빗자루 등과 염색용의 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분명히 적합한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

이와 유사한 목재이지만 대패질한 것 · 선반가공한 것[보통의 것이나 포울(pole) 선반으로 행하여진다] · 굴곡가공된 것이나 그 밖의 더 가공을 한 것과 산류(傘類)의 손잡이 · 지팡이 · 공구의 손잡이 등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되는 각 호에 분류한다.**

(5) 칩우드(chipwood) : 이것은 평삭(平削 : wood sliced) · 박피 · 때에 따라서 톽질한 것으로서 유연성이 풍부하고, 좁고 얇으며 균일한 스트립(strip)이다. 이것은 조물용 · 체 · 상자 · 바구니 · 약상자 · 성냥갑 등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성냥의 나무부분과(밧) 장화와 구두의 목정(peg)의 제조에 사용하는 유사한 나무의 스트립(strip)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대개 너도밤나무 · 개암나무로 만들어진 대팻밥도 분류하는데 이는 코일(coil)상의 칩우드(chip wood)와 비슷하며 식초 제조용이나 액체 청정용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두께 · 폭 · 길이가 균일하며 롤(roll) 모양으로 균일하게 둘둘 감겨 있어 **제4401호**의 깎아낸 웨이스트 부스러기와는 구별된다.

브러시(brush) 몸체의 블랭크(blank) · 부츠(boots)의 블랭크(blank) · 신발의 목재골(shoe last)은 **제4417호**에 분류한다.

44.05 -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목모(wood wool) : 목재의 가느다란 슬리머(sliver)가 곱슬곱슬하거나 꼬여서 헝크러진 덩어리로 된 것이다. 이러한 슬리머(sliver)는 일정한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길이가 상당히 길다[따라서 **제4401호**의 일반적인 우드(wood) 대팻밥과는 구분된다]. 이것은 통나무[포플러(poplar · 침엽수 등의 것)를 특수한 깎는 기계에 넣어 위의 형태로 만들어낸 것이다. 목모(wood wool)는 보통 압축된 베일로 포장하여 제시한다.

목모는 염색된 것 · 고무질을 첨가한 것 등이나 거칠게 꼬은 것이나 종이 사이에 끼워 넣어 시트(sheet) 모양으로 만든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것은 주로 포장용이나 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응결패널(agglomerated panel)[제4410호나 제6808호의 특정의 보드(board)]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목분(wood flour) : 톱밥 · 대팻밥 · 그 밖의 목질을 갈거나 톱밥을 체질하여 만들어지며 이것은 플라스틱(plastic) 공업에서 충전물로 주로 사용하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리놀륨(linoleum)의 제조용에도 사용한다. 목분은 입자의 크기가 더 작고 더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점에서 **제4401호**의 톱밥과 구별된다.

코코넛(coconut)의 껍질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부터 만든 유사한 가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404호)**.

44.06 -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406.11 -- 침엽수류

4406.12 -- 활엽수류

- 기타

4406.91 -- 침엽수류

4406.92 -- 활엽수류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철도나 전차노선의 궤도용으로 사용하는 단면이 다소 직사각형이고 대패질을 하지 않은 일체의 목재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받침목(sleeper)보다 길이가 긴 스위치 타이(switch tie)와 받침목(sleeper)보다 폭이 넓고 두꺼우며 대개 길이가 긴 브리지 타이(bridge tie)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의 가장자리를 거칠게 깎아내어 사면으로 한 것도 있으며 받침목은 레일(rail)이나 의자(chair)가 고정되도록 구멍이나 의자 부분(seating)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또한 쪼개지지 않도록 꺾쇠·못·볼트(bolt)·철제대로서 끝을 강화하는 수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보호의 목적으로 살충제나 살진균제로 표면처리한 것도 있으며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때로는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물질로 침투시키기도 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4406.11호부터 제4406.92호까지

이들 소호의 분류에 있어서 “주약처리한 것(impregnated)”은 장기간 보존의 목적으로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보존제(preservative)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운송이나 저장기간 동안 균류나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살균제·살충제로 처리한 받침목은 “주약처리하지 않은 것(not impregnated)”으로 분류한다.

44.07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침엽수류

4407.11 -- 소나무[피누스(*Pinus*)속]의 것

4407.12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

4407.13 -- 에스-피-에프(S-P-F)[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소나무(피누스(*Pinus*)속)와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4407.14 -- 헴퍼(Hem-fir)[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4407.19 -- 기타

- 열대산의 목재의 것

4407.21 --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4407.22 --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4407.23 -- 티크(Teak)

4407.25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407.26 --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4407.27 -- 사펠리(Sapelli)

4407.28 -- 이로코(Iroko)

4407.29 -- 기타

- 기타

4407.91 --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4407.92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4407.93 --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4407.94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4407.95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4407.96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의 것

4407.97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 것

4407.99 -- 기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하거나·평삭(平削 : slice)하거나 나무 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여러 가지의 목재와 원목을 분류한다. 이러한 목재와 수목에는 톱질하여 만든 기둥·두꺼운 판자·배판·판자·윗가지 등을 포함하며 칩핑(chipping)기계를 사용하여 대단히 정확한 치수로 쪼갬으로써 표면이 톱질한 것보다 더 우수하여 이후에 대패질이 불필요한 물품(톱질한 목재와 수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평삭(slice)하였거나 껍질을 벗긴 목재[로타리 컷(rotary cut)]와 마루판용 목재블록·스트립(strip)·프리즈(frieze)도 포함하는데 다만,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하여 성형한 것은 **제외한다(제4409호)**.

이 호에 분류하는 제재는 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거나 길이에 따라서 단면이 균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호의 물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연마(sanded) 하거나 엔드-조인트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도 있다(이 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거칠게 사각형으로 자른 목재(예: 거친 톱질에 의하여 등)(**제4403호**)
- (b)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제4404호**)
- (c) 베니어(veneer) 단판과 합판용 단판(과 따로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목재)으로서 두께가 6mm 이하의 것(**제4408호**)
- (d) **제4409호**에 해당하는 어느 한쪽 가장자리·마구리·면에 따라 연속 성형한 목재
- (e) **제4412호**의 목재의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
- (f) 건축용 목재건구(鍵具)와 목공품(**제4418호**)

44.08 -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 침엽수류

- 열대산 목재의 것

4408.3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408.39 -- 기타

4408.90 - 기타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veneer)판용·합판제조용·그 밖의 용도[바이올린(violin)용·담배상자용 등]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두께가 6mm 이하인 것(보강재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것은 톱질·평삭(平削 : wood sliced)·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평활하게 된 것·염색된 것·도포·침투시킨 것·종이·직물로 보강된 것·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시트(sheet)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한다.

합판(plywood)제조용 목재는 보통 박피 공정에 의하여 절삭되며 이 공정에서 통나무가 증기 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담겨지며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하여 연속적인 시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평삭(平削 : slicing) 과정에 있어서 일단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불린 통나무는 수직이나 수평방향으로 움직여 회전하는 칼날에 맞대어 절단되는데,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칼날을 향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과정이 바뀌어도 통나무는 고정된 칼날을 향해 움직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는 아주 얇은 시트로 평삭(平削 : wood sliced)된다.

베니어용 단판(sheets for veneering)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제작된 단판 대신 적층 목제품의 블록의 평삭(平削 : wood sliced)에 의해서도 생산이 된다.

이 호의 단판은 이어서 만든 것도 있다[즉, 합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에 사용하는 더 큰 시트를 만들기 위하여 단판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를 테이프(tape)로 감거나 봉재하거나 접착시킨 것]. 이밖에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된 것도 있다(이 류 총설 참조). 더욱이 결함(예: 옹이구멍)을 감추기 위하여 합판용 단판에 종이·플라스틱(plastics)·목재를 댄 것은 이 류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캐비닛(cabinet) 제조에 사용하는 고급질의 베니어(veneer)용 단판은 톱질(sawing)이나 평삭(平削 : slicing)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호에는 횡단면이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약 3mm 정도로서 불꽃제품·상자·완구·모형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길이가 짧은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플레이팅(plaiting)용으로 사용하거나 칩(chip) 바구니·약상자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폭이 좁은 스트립(strip) 모양의 평삭(平削 : sliced)이나 박피(peeled)한 목재는 **제외한다(제4404호)**.

44.09 -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4409.10 - 침엽수류
 - 활엽수류
- 4409.21 -- 대나무로 만든 것
- 4409.22 -- 열대산 목재의 것
- 4409.29 -- 기타

이 호에는 특히 판자(board)·후판(planks) 등의 모양으로 된 목재를 분류한다. 이들의 것은 다음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4)항에 열거한 몰딩(mouldings)이나 비딩(beadings)을 만들기 위하여 톱질이나 각재한 후에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에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하는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류 총설 참조). 연속적으로 성형한 목재에는 전 길이나 너비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물품과 부조의 디자인(design)이 반복적인 물품 모두를 포함한다.

블록가공 목재(tongued wood)·홈가공 목재(grooved wood) : 일반적으로 한쪽 가장자리나 마구리에 홈(凹)을 파고 다른 가장자리에는 중심선을 따라 볼록(凸) 모양을 만들어서 결합할 때 볼록(凸) 모양의 것이 홈(凹)에 고정되도록 만든 판이다.

은축이음가공 목재(rebated board) : 한쪽이나 양쪽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잘라내어 꺾방으로 만든 것이다.

경사이음가공 목재(chamfered board) : 면과 가장자리나 마구리에 대하여 각도있게 하나 이상의 모서리를 세로로 깎은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2) 브이형 이음가공 목재(V-jointed wood) : [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깎아 사면으로 한 것] : **중앙에 V자형의 접합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즉, 판자운데에 V자형의 홈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자리나 마구리가 볼록(凸) 모양·홈(凹) 모양·때로는 모서리를 세로로 깎은 것).

(3) 구슬형가공 목재(beaded wood)[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와 볼록(凸) 모양 사이에 단순한 구슬선이 있는 것] : **중앙이 구슬선 모양으로 된 것**(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의 것으로서 표면의 중앙을 따라서 단순한 구슬선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몰딩(moulding)이나 비딩(beading)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 즉, 그림틀·벽장식·가구·문 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형(기계적이나 수공으로)가공한 목재의 스트립(strip)

(5) 원형가공 목재(rounded wood) : 인발 목재(drawn wood)와 같은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둥근 얇은 목봉으로서 성냥축목·신발용의 나무못·특정의 차양[피놀리움 블라인드(pinoleum blind)]·이쑤시개·치즈 제조용의 스크린(screen)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경이 2mm부터 75mm까지이고 길이가 45cm부터 250cm까지인 횡단면이 균등한 둥근 나무봉이나 막대로 된 일정한 길이의 나무못(예: 목재가구 부분품의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좁은 판 조각으로 구성되는 마루판용의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로서 예를 들면, 요철 가공 등의 연속가공을 한 경우에 정하여 이를 포함한다.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제4407호**에 해당된다.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용의 합판이나 베니어(veneer)판의 스트립(strip)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제4412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상자용 판자로서 세트르 제시된, 대패질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판자(**제4415호**)
- (b) 양단에 장부구멍이나 장부를 만들거나 열장이음으로 하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와 건축용 목공품이나 목재건구의 패널(panel)로 조립된 목재[예: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panel)·목재블록과 스트립(strip)·프리즈(frieze) 등으로 된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 패널을 포함한다. 목재의 하나 이상의 층의 지지가 있는지에 상관없다](**제4418호**)
- (c) 거칠게 톱질한 목재의 윗가지로 된 패널(panel)로서 수송이나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교로 결집한 것(**제4421호**)
- (d) 몰딩(moulding)을 다른 성형 목재나 성형하지 않은 목재에 얹혀놓고 만든 성형목재(**제4418호**나 **제4421호**)
- (e) 대패질이나 연마 이상의 표면가공[페인트·착색·바니시칠한 것을 **제외한다**]을 한 목재[예: 베니어판을 댄(veneered) 것·광택처리한 것(polished)·청동색을 칠한 것(bronzed)·금속박을 표면에 입힌 것(faced with metal leaf)](일반적으로 **제4421호**)
- (f) 가구의 결합에 적합하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종류의 목재 스트립(strip). 즉, 식기선반과 책장의 선반 등에 사용하는 눈금을 새긴 스트립(strip)(**제9403호**)

44.1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를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목재로 만든 것

4410.11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410.12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

4410.19 -- 기타

4410.90 - 기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압축이나 압출에 의하여 길이·폭·두께가 가지각색으로 제조된 평판 모양의 물품이다. 이것은 보통 통나무나 목재 잔재물의 기계적 세편화에서 얻어지는 나무칩(wood chip)이나 파티클(particle)로 만들어진다. 또한 이것은 사탕수수 찌꺼기·대나무·곡물짚의 부서진 조각과 같은 목질 재료나 아마와 대마의 결속섬유를 가지고 제조된다. 파티클 보드는 대개 열경화성 수지인 유기결합제의 첨가에 의하여 보통 응결되는데 그 양은 보드 중량의 보통 15% 이하이다.

이 호의 파티클보드를 구성하는 칩(chip)·파티클(particle)이나 그 밖의 조각들은 보드의 가장자리에서 흔히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파티클(particle)이나 조각들을 제4411호의 섬유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질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와 구별하는데 현미경 관찰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 : 길이가 폭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되는 얇은 나무 스트랜드(strand)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트랜드들은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나 페놀수지(phenolic resin)와 같은 결합제(대개 방수)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며, 층 사이에 함께 끼워 놓여져 두꺼운 매트(mat)를 형성하는데, 스트랜드는 판자의 기계적 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외면층에서는 일반적으로 길이방향으로 배향성(配向性 : oriented)을 가지며, 내면층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차 방향으로 배향성(配向性)을 가지거나, 임의 방향으로 놓여진다. 단단하고 균일하며 강한 구조의 보드(board)를 만들기 위해서, 매트(mat)는 열과 압력을 받아야 한다.

(2) 웨이퍼보드(waferboard) : 길이가 폭의 2배 미만인 얇은 나무 웨이퍼(wafer)로 만들어진다. 이 웨이퍼들은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나 페놀수지(phenolic resin)와 같은 접착제(대개 방수)에 의해 혼합되어 있으며, 임의방향으로 함께 끼워 놓아 두꺼운 매트(mat)를 형성한다. 고강도와 방수성을 가진 단단하고 균일한 구조의 보드(board)를 만들기 위해서 매트(는 열과 압력을 받아야 한다.

보통 이 호의 파티클보드는 사포질하여 있다. 더욱이 구성 재료의 응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판자에 부가적인 특성(예: 물에 대한 불침투성·방부·방충·방화·방화염성·내(耐)화학작용이나 전기 저항성, 고밀도 방지)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물질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그 침투물질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추출제조된 파티클보드에는 양 끝까지의 내부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적층판을 분류한다.

- (1) 섬유판(fibreboard)로 한 면이나 양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 ;
- (2) 여러(several) 매를 겹붙인 파티클보드[섬유판(fibreboard)로 한 면이나 양면을 피복했는지에 상관없다] ;
- (3) 배열순서에 관계없이 여러 매의 섬유판과 여러 매의 파티클보드를 조합한 것

제9부
44.10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식물·플라스틱·페인트·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충전제(filler)로서 목분(wood flour)을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과 스트립(strip)(**제39류**)
- (b) 목재 베니어(veneer)판을 낸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유사한 판자[예: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와 웨이퍼보드(wafer board)](양쪽 끝과 끝까지의 내부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4412호**)
- (c)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양면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제4418호**)
- (d) 목질재료를 시멘트(cement)·플라스터(plaster)·그 밖의 광물성 결합제로 응결시킨 판자(**제6808호**)

또한 이 호에서는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는 제품이나 부분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다**[압축·압출·몰딩(moulding)·그 밖의 공법에 의하여 직접 얻어진 것].

44.11 -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4411.13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4411.14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기타

4411.92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4411.93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을 초과하고 0.8그램 이하인 것

4411.94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섬유판(fibreboard)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이나 그 밖의 섬유를 분리한 목질 셀룰로오스(cellulose) 재료(예: 사탕수수 찌꺼기나 대나무에서 얻어진 것)를 가지고 제조된다. 보드(board)를 구성하는 섬유는 현미경 관찰에 의하여 식별된다. 이들은 펠팅(felting)에 의하여 보드 내에 엉겨 결합되었거나 자체함유 리그닌(lignin)에서 생긴 자체 접착력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섬유를 응결시키기 위하여 수지나 그 밖의 다른 유기결합제를 첨가하기도 한다. 칩투제나 그 밖의 물질이 보드를 제조할 때나 제조 후에 추가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물에 대한 불침투성 · 방부 · 방충 · 방염 · 방화염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섬유판은 단판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시트(sheet)를 겹붙여 만들어져 있다.

이 호의 섬유판(fibreboard)의 범주는 그것들의 제조공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건식제조공정(dry production process)”에 의해 생산되는 섬유판

이 그룹은 특히 열경화성 수지를 건조 목재에 첨가하여 프레스(press) 과정에서 접착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제조된 **중밀도 섬유판(MDF : medium density fibreboard)**을 포함한다. 밀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0.45 \text{ g/cm}^3 \sim 1 \text{ g/cm}^3$ 이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표면은 부드럽다. 가구 · 실내장식 · 건축 등 용도가 다양하다.

중밀도 섬유판(MDF) 중에서 밀도가 0.8 g/cm^3 을 초과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고밀도 섬유판(HDF : high density fibreboard)”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B) “습식제조공정(wet production process)”에 의해 생산되는 섬유판

이 그룹에 속하는 섬유판은 다음과 같다.

- (1) 하드보드(hardboard) :** 물속에 담가 둔 목재 섬유(fiber)를 고온 고압의 철제 메시(mesh)로 압축하여 매트(mat) 형태로 만드는 습식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된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섬유판의 한 쪽 면은 부드럽고 다른 쪽 면은 메시(mesh) 자국이 남아 거칠다. 그러나 특수 처리를 했거나 특별한 제조 공정으로 제조되었을 경우에는 양면이 모두 부드럽다. 밀도는 보통 0.8 g/cm^3 을 초과한다. 하드보드는 주로 가구·자동차 도어스킨(doorskin)용·포장용 특히 과일과 채소 포장 등에 사용한다.
- (2) 중밀도보드(mediumboard) :** 하드보드 제조 공정과 유사하지만 좀 더 낮은 압력에서 제조된다. 밀도는 일반적으로 0.35 g/cm^3 초과 0.8 g/cm^3 이하이다. 주용도는 가구·인테리어(interior)·외벽 등이다.
- (3) 소프트보드(softboard) :** 습식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다른 형태의 섬유판과 달리 이 섬유판은 압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밀도는 일반적으로 0.35 g/cm^3 이하이다. 이들 보드는 주로 건물의 단열이나 방음용으로 사용한다. 특수한 형태의 보드(board)는 덮개(sheathing materials)나 널 재료(sarking materials)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페인트·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 하지만,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한 매나 여러 매의 섬유판으로 적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제4410호)
- (b) 섬유판을 중간층으로 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제4412호)
- (c) 양면이 섬유판으로 이루어진 셀룰러(cellular) 목재 패널(panels)(제4418호)
- (d) 복합판지와 같은 판지·프레스판(presspan)·마분지[일반적으로 쪼개보면 명확한 기층구조에 의해 섬유판과 구별되는 것](제48류)
- (e)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섬유판 패널(fiberboard panel)(일반적으로 제94류)

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412.33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단풍나무[아서(*Acer*)속]·참나무[코커스(*Quercus*)속]·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속]·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속]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속]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34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3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단판적층재(LVL)

4412.4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412.4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4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4412.5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412.5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5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4412.9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412.9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9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

(2) 베니어패널(veneered panel)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veneer)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veneer)판은 본질적인 특성이 베니어(veneer)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3)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blockboard) · 라민보드(laminboard) · 배튼보드(battenboard)[심(core)이 두겹고 목재의 블록(block) · 윗가지 · 배튼(batten)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이나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다]
- 패널(panel)[목재의 심(core)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화이버보드(fibreboard) · 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waste) · 석면 · 코르크(cork)와 같은 그 밖의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적층빔(laminated beam)이나 아치(arche)와 같은 부피가 큰 물품[소위 “글루람(glulam)”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418호).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 · 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 · 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 · 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 · 가장자리 · 마구리의 처리 · 도포 · 피복[예: 직물 · 플라스틱 · 페인트 · 종이 · 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 하지만,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또한 마루판(flooring panel)으로 사용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parquet floo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 · 베니어패널(veneered panel) ·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포함한다. 이들 패널(panel)은 조립된 마루패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veneer)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평삭(slicing)하여 얻은 것으로서 베니어링(veneering)에 사용하는 목재의 얇은 시트(sheet)(제4408호)
- (b) 적층된 고밀도화 목재의 패널(panel)(제4413호)
- (c) 셀룰러(cellular) 목재 패널(panel)과 조립된 마루판 패널(panel) 등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 패널(panel)이나 타일(tile)[다층형 쪽마루판 패널(panel)이라고 불리는 하나 이상의 목재층으로 된 지지물에 조립된 목재 블록(block) · 스트립(strip) · 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제4418호).
- (d) 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제4420호)
- (e) 가구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패널(panel)(일반적으로 제94류)



[소호해설]

소호 제4412.10호 · 제4412.31호 · 제4412.33호 · 제4412.34호와 제4412.39호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

소호 제4412.41호 · 제4412.42호와 제4412.49호

단판적층재(LVL)는 공학목재복합재로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며 중량(weight) 대비 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荷重)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 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연속하게 이은 베니어판들). 원목을 꺾질을 벗겨서 얇은 베니어판으로 만들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함께 접합시킨다. LVL의 제조에 사용하는 베니어판은 종종 엇걸이 이음하거나, 양 끝을 접합하거나 겹치거나 하여 지속적인 강도(強度) 특성을 갖도록 한다.

44.13 -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플레이트(plate) 모양, 스트립(strip) 모양,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고밀도화 목재(densified wood)란 밀도나 경도(硬度)를 증가시키고 기계적 강도나 내화학약품성이나 전기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학적 처리를 한 목재이거나 물리적 처리를 한 목재이다. 어떤 고밀도화 목재는 원목이거나 여러 층이 접착되어 있는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층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도록 접합처리를 보통 이상으로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 호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의 주된 공정 즉, 주입법과 압축법을 사용하며 이들 공정은 단독이나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입법(impregnation)에 목재에다 일반적으로 열경화성 수지를 많이 침투시키거나 용융 금속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열경화성 수지[예: 아미노수지(amino-resin)나 페놀수지(phenolic resin)]의 주입은 원목일 때 보다는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만들 얇은 베니어(veneer)판에 더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금속화 목재(metallised wood)는 미리 가열시킨 중공이 아닌 목재의 편을 가압하에 밀폐용기(폐관) 내에 들어있는 용융금속[예: 주석·안티모니(antimony)·납·비스무트(bismuth)·그들의 합금]속에 집어넣어 만들어진다. 금속화 목재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3.5g/cm^3 을 초과한다.

압축법(densification)은 목재의 세포를 압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 이것은 강력한 수압기나 롤러(roller) 사이에 횡으로 압축시키거나 고압솥 내의 고온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압축시켜 만든다. 고밀도화 목재는 밀도가 1.4g/cm^3 정도이다.

주입법(impregnation)과 압축법(densification)은 동시에 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얇은 목재의 시트(sheet)(보통은 너도밤나무의 것)를 고온·고압하에 열경화성 수지로 접착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목재에 깊이 침투되고 견고하게 압축된다.

고밀도화 목재는 일반적으로 기어·셔틀(shuttle)·베어링(bearing)과 그 밖의 기계부분품·프로펠러(propeller)·애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화학공업용의 용기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44.14 - 목재로 만든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1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414.90 - 기타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모양과 크기의 나무로 만든 틀을 분류하며 이는 원목의 블록(block)을 깎아서 일체로 만들어지거나 비딩(beading)이나 몰딩(moulding)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 호의 틀 중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으로 만든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유사한 보드 · 섬유판(fibreboard) · 적층 목재(laminated wood) ·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틀에 뒷판 · 지지물 · 평유리를 부착시킨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나무로 만든 틀에 들어 있는 인쇄한 그림과 사진은 틀이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 호에 분류하며 ; 그 밖의 경우에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틀이 있는 유리거울(framed glass mirror)은 역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009호)**.

회화 · 데생(drawing) · 파스텔(pastel) · 콜라주(collage) · 이와 유사한 장식판과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 석판화를 틀속에 넣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체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나 틀을 별도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결정에 관해서는 제97류의 주 제5호와 제9701호와 제9702호의 해설 규정을 참고한다.

44.15 - 목재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로 만든 케이블드럼, 목재로 만든 팻릿(pallet), 박스팻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팻릿칼러(pallet collar)

4415.10 -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415.20 - 팻릿(pallet), 박스팻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팻릿칼러(pallet collar)

이 호에 분류하는 제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I) 포장용의 케이스(case)·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포장용의 케이스·상자 : 측면·뚜껑·바닥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포장용이나 운송용에 사용한다.
- (2) 크레이트(crate)·과실·채소용의 상자·달걀상자(egg tray)·그 밖의 측면이 얇고 상부가 열려있는 용기(유리제품·도자제품·기계류 등의 운송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다)
- (3) 치즈(cheese)·의약품 등의 포장용으로 사용하며 평삭(平削 : sliced)하거나 박피(peeled)한 목재로 만든 상자(다만, 엮은 목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성냥갑(불을 켜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버터(butter)·과실 등의 판매에 사용하는 원추형의 열려있는 용기
- (4) 드럼(drum)·배럴(barrel)형의 용기 : 염색재료·화학약품 등의 운반용에 사용한다. 그러나 통제조업자(cooper)가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용기는 뚜껑이 없이 제시할 수도 있다[케이스(case)·크레이트(crate) 등과 같은 “오픈(open)”용기]. 이러한 용기는 조립하지 않은 상태나 부분 조립상태로 제시될 수 있는데 **다만**, 완성된 용기로서의 필요한 부분품이나 불완전한 용기이지만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부분품이 “세트(set)”로 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세트(set)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톱질한 것·대패질한 목재·합판 등으로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포장용 케이스(case) 등은 간단한 못질·열장이음(dovetailed)·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경첩·손잡이·파스너(fastener)·다리·코너피스(corner piece)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금속·종이 등으로 안을 댄 경우도 있다.

중고의 상자·크레이트(crate) 등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면 이 호에 분류하나 연료용 이외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제4202호**의 물품
- (b) **제4420호**의 개스킷(gasket)·케이스(case)·이와 유사한 물품
- (c) 하나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container)(**제8609호**)

(Ⅱ) 케이블드럼(cable-drum)

케이블드럼(cable-drum)은 전선·전화선·이와 유사한 케이블(cable)을 고정하고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큰 드럼(drum)으로서 때로는 직경이 1m를 초과하는 것도 있다. 이들은 케이블을 까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 롤(roll) 모양으로 되어 있다.

(Ⅲ)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적재용 보드(load board)는 기계장치에 의한 취급·운송·보관용의 간단한 짐꾸러미를 만들기 위한 다량 물품 조립용의 이동형 플랫폼(platform)이다.

팰릿(pallet)은 운반자가 별개인 두 개의 덱(deck)으로 구성하거나 지지해 주는 다리가 있는 한 개의 덱(deck)로 구성된 적재용 판자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fork-lift truck)이나 팰릿 트럭(truck)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박스팰릿(box pallet)은 상층구조가 적어도 3면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있거나 수직면을 접을 수 있으며 이중의 덱팰릿(deck pallet)이나 다른 박스팰릿(box pallet)과 함께 사용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 밖의 적재용 보드 : 예를 들면, 플랫폼(platform)·포스트 플랫폼(post platform)·칼라형의 박스플랫폼(collar-type box platform)·사이드레일 플랫폼(side-rail platform)·엔드레일 플랫폼(end-rail platform) 등이 있다.

(Ⅳ) 팰릿칼러(pallet collar)

팰릿칼러(pallet collar)는 네 개의 목재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음고리로서 보통 이들 목재의 끝에는 경첩(hinge)이 있어서 이들이 팰릿(pallet) 자체의 프레임(frame)을 형성한다.

**44.16 - 목재로 만든 통, 배럴(barrel), 배트(vat), 튜(tub),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통 제조업자(cooper)의 거래 제품인 용기류에 한정한다. 이것은 본체를 이루고 있는 “통재와 준재(stave : 통널판)”에 홈을 내어 뚜껑과 밑바닥(bottom)이 부착되도록 되었으며 그 형태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테두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통[툰(tun)·배럴(barrel)·호그헤드(hogshead) 등]이 포함되며[틈이 없이 딱 짜여진 것(액체용)이나 느슨하게 짜여진 것[건조물품류(dry goods)용], 배트(vat)·튜(tub)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분해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일수도 있으며 내면을 대거나(lined) 도포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통재와 준재(stave : 통널판)”와 통제조업자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목제품(완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도 분류한다[예: 배럴(barrel)의 뚜껑·조립되기 적합한 길이로 절단되고 끝을 췌기 모양으로 금을 새긴 후프우드(hoopwood)].

이 호에는 완성되지 않은 정도로 가공된 통재와 준재(stave : 통널판)[목재의 통재와 준재(stavewood : 통널판나무)] 즉, 배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통제조업자 제품의 측면·두부·밑바닥(bottom)를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목재의 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이러한 목재의 통재와 준재(stavewood : 통널판나무)에는 다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수가 있다.

- (1) 나무 몸통(樹幹 : tree trunk)의 단면을 방사 조직의 방향에 따라 쪼갠 스트립(strip) : 이러한 쪼갠 스트립(strip)은 주요한 일면을 더 평활하게 톱질하고 다른 면은 도끼나 칼로 단순히 다듬은 경우도 있다.
- (2) 두 개의 주요 면 중 적어도 한 면이 오목(凹)하거나 볼록(凸)하게 톱질한 통재와 준재(stave : 통널판) : 이러한 곡면은 둥근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주요한 양면을 평활하게 톱질한 목재(**제4407호**나 **제4408호**)
- (b) 통재와 준재를 뚜껑과 밑바닥(bottom)에 못으로 결합하여 만든 용기(**제4415호**)
- (c) 가구[예: 테이블(table)과 의자]로 사용하기 적합한 모양으로 절단한 캐스크(cask) 등(**제94류**)

44.17 - 목재로 만든 공구 · 공구의 몸체 · 공구의 손잡이 · 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 목재로 만든 신발의 골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나무로 만든 공구**(날 · 작용단 · 작용면 ·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제82류의 주 제1호에 열거한 재료 중 어느 한 재료로 만든 공구는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에는 주걱(**제4419호**의 주방용품을 **제외한다**) · 모형 제작용 칼 · 망치 · 칼퀴 · 쇠스랑 · 삽 · 나무나사 · 클램프(clamp) · 연마지의 블록 등을 포함한다.
- (2) **나무로 만든 공구의 몸체**(예: 대패 · 바퀴살대패(spokeshave) · 활 모양 톱 · 유사한 공구) : 금속으로 만든 작용부분(날이나 철)이 부착되지 않은 것
- (3) **나무로 만든 공구의 손잡이**[예: 가래 · 삽 · 칼퀴 · 해머 · 나사드라이버(screwdriver) · 톱 · 줄 · 칼 · 다리미 · 일부인(日附印 : date sta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스탬핑(stamping)기용의 손잡이] : 이것은 선반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 **나무로 만든 비나 브러시(brush)의 몸체** : 이 물품은 비나 솔의 두부에 적합한 형으로 성형된 목재의 편으로서 완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한 개 이상의 목재로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 (5) **나무로 만든 비나 브러시의 손잡이** : 이는 선반가공되었는지에 상관없고, 한쪽 끝에 섬유나 강모가 부착되도록 만든 종류의 것[페인트(paint)칠용의 솔 등]이나 몸체에 부착되도록 만든 종류의 것(예: 비의 손잡이)인지에도 상관없다.
- (6) **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boot or shoe last)[즉, 신발 제조용의 목형(tree)] : 완성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는 신발류의 모양을 유지시키고 신장시키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유사한 보드 · 섬유판(fibreboard) · 적층 목재(laminated wood) ·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공구의 손잡이 제조에 사용하는 거칠게 손질하고 둥글게 만든 목재(**제4404호**)
- (b)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제조용으로 단순히 톱질한 목재[예: 블록(block) 모양의 것]로서 블랭크(blank)의 단계까지는 성형되지 않은 것(**제4407호**)
- (c) 식탁용 칼 · 스푼(spoon) · 포크용 목재 손잡이(**제4421호**)
- (d) 모자 제조용의 블록(block)(**제8449호**)
- (e) **제8480호**에 해당되는 나무로 만든 주형 등
- (f) 기계류나 기계류의 부분품(**제84류**)

44.18 -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 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418.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418.19 -- 기타

- 문 · 문틀 · 문지방

4418.2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418.29 -- 기타

4418.30 - 기둥과 들보(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

4418.4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418.50 - 지붕을 이는 판자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3 --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4418.74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8.75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8.79 -- 기타

- 구조용 공학목재

4418.81 -- 집성재[글루램(glulam)]

4418.82 -- 직교집성판[씨엘티(CLT)나 엑스램(X-lam)]

4418.83 -- 아이빔(I beam)

4418.89 -- 기타

- 기타

4418.91 -- 대나무로 만든 것

4418.92 -- 셀룰러우드패널

4418.99 -- 기타

이 호에는 빌딩(building) 등의 건축용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가공품[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조립품의 모양이나 조립되지 않은 부분으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것[예: 장부(tenon) · 장붓구멍(mortise) · 열장이음(dovetail) · 그 밖의 결합용 접합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하며, 돌쩌귀(hinge) · 자물쇠 등과 같은 금속제 부착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 섬유판(fibreboard) · 적층 목재(laminated wood)나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건구(joinery)**”에는 특히 건축용 부속품[문·창·셔터(shutter)·계단·문틀·창틀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건축용 목공품(carpentry)**”은 구조물용이나 발판·아아치(arch) 모양의 지지물 등에 사용하는 나무의 가공품(대들보·서까래·지붕 버팀목 등)을 말하며 콘크리트(concrete) 건설공사용 조립 거푸집 널을 포함한다. 그러나 합판패널(plywood panel)은 콘크리트 셔터링(concrete shuttering)의 목적으로 표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제4412호**에 분류한다.

또한 나무로 만든 건축용 목공품에는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적층목재(glulam)도 포함하는데 이는 본래 평행한 결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목재를 적층·접착하여 만든 구조용 목재이다. 만곡(彎曲 : curved)의 적재품은 각 적재품의 평면이 덧된 로드(load)의 평면과 90도가 되도록 배열한다. 이렇게 하여 수직의 적층목재 빔(glulam beam)의 적층은 평판 모양으로 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4412호의 해설에 기술된 블록보드(block board)와 배튼보드(batten board)와 외모가 다소 비슷하지만 심을 이루고 있는 배튼(batten)이나 윗가지(lath)가 서로 간격을 두고 평행이나 격자창 모양으로 놓여 있는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을 포함한다. 특정 경우의 패널(panel)은 가장자리만이 내부프레임(internal frame)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표면 시트(sheet)를 서로 분리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갈라진 틈은 방음재료나 내열재료[예: 코르크(cork)·글라스 울(glass wool)·목재펠프·석면]로 충전할 수도 있다. 외부표면 시트(sheet)는 원목·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이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합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그 패널(panel)(제4412호의 것과 비슷한)은 비금속으로 표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비교적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격벽용·문용과 때로는 가구 제조용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마루판[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을 포함한다]**이나 **타일(tile)의 조립에 사용한 원목블록·스트립(strip)·프리즈(frieze)**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block), 스트립(strip), 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이나 타일(tile)을 포함한다. 맨 위 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 패널을 이루는 스트립을 두 줄 이상 덧댄다. 이러한 패널이나 타일(tile)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돌출부분이 대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을 수 있다.

싱글(shingle) : 일반적으로 한쪽 끝은 5mm보다 두꺼우나 다른쪽 끝(tip)은 5mm보다 얇은 길이방향으로 톱질한 목재이다. 양끝을 다시 톱질하여 평행하게 한 것도 있으며, 버트(butt)를 다시 톱질하여 끝과 직각을 만들거나 구부러진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으로 한 것도 있다. 이 판자의 면 중 한 면을 버트(butt)로부터 팁(tip)까지 연마하거나 길이 방향을 따라 홈을 낸 것도 있다.

쉐이크(shake) : 볼트(bolt)나 블록(block)을 쪼개어 손으로 만들거나 수공이나 기계로 만든 목재이다. 이것은 분할함으로써 생기는 목재의 천연의 결이 쉐이크(shake) 면에 나타난다. 가끔 쉐이크(shake)는 길이 방향으로 톱질하여 두 개의 쉐이크를 만들기도 하는데 각각 쪼개진 앞면과 톱질된 뒷면을 가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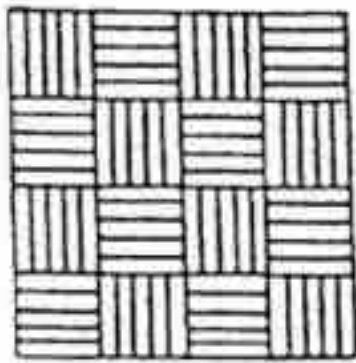
- (a) 마루판으로 사용하는 합판 패널·베니어 패널(veneered panel)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합판의 패널(**제4412호**) : 제4418호의 조립 바닥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veneer)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 (b) 식기선반(뒷면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장이나 벽에 못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걸어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제9403호**)
- (c)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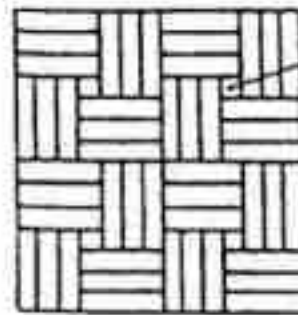
[소호해설]

소호 제4418.74호

모자이크(mosaic) 마루용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panel)은 미리 조립된 패널로 각각 분리된 정방형이나 사각형 요소로 구성되며, “카보송(cabochon)”[원하는 패턴(pattern)을 얻기 위해 충전재로서 사용하는 작은 정방형·사각형·삼각형·다이아몬드(diamond)형이나 다른 형태를 갖춘 나무 조각]을 포함할 수도 있다. 스트립(strip)은 어떠한 패턴(pattern)에 따라 펼쳐진다[예: 체크무늬(chekered pattern)·바스켓 조직(“basket-weave” pattern)·헤링본 무늬(herringbone pattern)](아래의 예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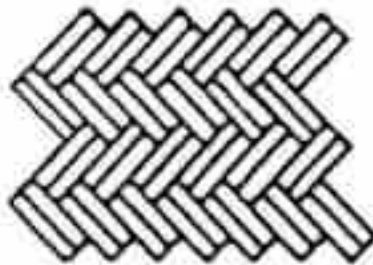


체크 무늬



‘바스켓 직물’ 무늬

카보송



헤링본 무늬

소호 제4418.81호·제4418.82호·제4418.83호와 제4418.89호

이들 소호에서, “구조용 공학목재”란 단순한 제재목(제4407호)보다 강도(強度)를 높이기 위한 적층재나 목재품의 결합재[예: 목재, 단판적층재(LVL), 합판,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로 구성된 물품을 말한다. 이들 생산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집성재(glue-laminated timber)[글루램(glulam)]은 무거운 구조용 구성재로서 목재를 각 층의 나뭇결을 연속된 층들의 나뭇결과 평행하게 방향성을 부여한 채로 함께 접합시켜 여러 층으로 구성한 것이다.

직교집성판[cross-laminated timber(CLT) : X-램(X-lam)]이나 교차 플라이 목재(cross-ply timber)라고도 한다]는 커다란 구조용 빌딩 패널로서, 세 개 이상의 목재 층들을 함께 적층하여 구성한 것이다. 각 층은 옆으로 나란히 배열한 다층의 단단한 목재 판[두께가 6 m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톱질·쪼갠질(chipped)·평살(sliced)·박피(peeled)한 목재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함께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 층 목재의 나뭇결은 일반적으로는 인접한 층들의 나뭇결에 대해 직각 방향이다.

CLT는 베니어 단판(두께가 6 mm 이하인 것)이 아니라 단단한 제재목을 층으로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다는 면에서 합판(plywood)과는 구분된다. 나뭇결을 상호 교차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세로방향과 가로방향 모두에서 구조적 견고성을 높이고, 하중(荷重)을 견뎌야 하는 용도에서 구조적 지지물이 될 수 있다.

아이빔(I-beam)[I-조이스트(I-joist)라고도 한다]은 “I” 모양의 공학 목재 구조재로서, 상부·하부 플랜지(수평 구성재)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웹(web, 수직 구성재)으로 결합되어 있다. 플랜지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판 적층재(LVL)나 단단한 제재목이며, 웹(web)은 합판이나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로 만들어진다.

44.19 -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대나무로 만든 것

4419.11 --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4419.12 -- 젓가락

4419.19 -- 기타

4419.2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419.90 - 기타

이 호에는 식탁용이나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기목이나 상감세공목제품을 포함한다)만을 분류한다. 그러나 주로 장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수저·포크(fork)·샐러드(salad)용 그릇 ; 쟁반·접시 ; 향아리·컵(cup)·소스접시(saucer) ; 양념통·그 밖의 주방용기 ; 브러시가 **부착되지 않은** 크럼-스쿠프(crumb-scoop) ; 냅킨꽃이(napkin ring) ; 롤링핀(rolling pin) ; 파이용 몰드(pastry mould) ; 버터패터(butter pater) ; 페스틀(pebble) ; 견과류 까는 도구 ; 트레이(tray) ; 공기 ; 빵 반죽하는 판 ; 도마 ; 식기선반 ;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량 측정기구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통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coopers' products)(**제4416호**)

(b)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의 부분품(**제4421호**)

(c) 브러시나 비(**제9603호**)

(d) 수동식의 체(**제9604호**)

44.20 -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420.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420.19 -- 기타

4420.90 - 기타

이 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의 패널을 분류하며 패널(panel)의 일부가 목재 이외의 재료가 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의력을 심히 기울이고 정교하게 만든 다양한 목제품(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의 것을 포함한다), 즉, 정교한 세공품[예를 들면, 장식함 또는 보석상자] ; 소형 설비품 ; 장식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거울이 부착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호에 기술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품에 천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판지·플라스틱·방직용 섬유의 직물 등으로 전부나 일부 안을 댄 경우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목제품인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옷칠한 나무로 만든 상자(중국식이나 일본식의 것) ; 칼붙이류·과학기구 등 용도의 목제 케이스·상자 ; 호주머니·핸드백(handbag)에 휴대하거나 신변에 부착하는 코담배갑·그 밖의 소형 상자 ; 문방구용의 상자 등 ; 바느질고리(needlework box) ; 담배통·사탕과자상자. 그러나 이 호에는 보통의 부엌용의 양념통 등은 **제외한다(제4419호)**.

(2)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 : 따라서 이 호에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의복솔걸이(clothes brush hanger)·편지통(사무실용)·재털이·펜갑(pen-tray)·잉크스탠드(ink stand) 등의 물품을 분류한다.

(3) 작은 조각상·동물상·인물상과 그 밖의 장식품

이 호의 물품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은 **제외한다(제4421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나무로 만든 악기케이스·총케이스(cases for gun)·시드(sheath)·케이스·상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가죽·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종이나 판지·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플라스틱시팅(sheeting of plastic)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한 것(**제4202호**)

(b)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c) **제91류**의 클록(clock) 케이스와 그 부분품

(d) **제92류**의 악기와 그 부분품

(e) 휴대용 무기의 집(scabbard and sheath)(**제9307호**)

(f)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g) **제96류**의 흡연 파이프와 그 부분품·단추·연필·그 밖의 제품

(h) **제97류**의 예술품이나 골동품

44.21 - 그 밖의 목제품

4421.10 - 옷걸이

4421.20 - 관(棺)

- 기타

4421.91 -- 대나무로 만든 것

4421.99 -- 기타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 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앞의 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하는 물품(**제4416호** 물품은 **제외한다**)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스푼(spool)·콕(cop)·보빈(bobbin)·재봉사 릴(reel) 등 :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실이나 가느다란 금속선이 감겨질 수 있는 축(또는 심) (선반가공된 목재의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축은 원통형이나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수도 있고 중앙에는 보통 구멍이 있으며 한쪽이나 양쪽 끝에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선반가공된 목재의 중심축에 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단이 부착되어 만든 보빈(bobbin)도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보빈은 예를 들면, 절연전선용에 사용한다.

(2) 토끼장·닭둥우리·벌통·새장·개집·여물통; 가축용 멩에

(3) 무대배경; 가구장이용 벤치(joiners' bench); 책을 손으로 꿰매는데 사용하는 십자실을 붙잡기 위한 스크루(screw)장치를 갖춘 테이블; 사다리·계단; 발판; 문자·도로표지·수자; 간판; 원예용 레이블(label) 등; 이쑤시개; 창살과 울타리용패널(fencing panel); 건널목 문; 롤러블라인드(roller blind); 베니스식이나 그 밖의 발; 마개; 형판; 스프링 블라인드용 롤러(roller for spring blind); 옷걸이; 세탁용보드(washing board); 다리미용 보드(ironing board); 빨래집게; 장부편·노·삿대·배의 키; 관(棺); coffin

(4) 포장용의 목재블록(wool paving block): 이들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균일하고 직사각형으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복식의 둥근톱으로 제조된다.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블록(block)의 팽창을 고려하여 측면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못질을 하는 수도 있다.

(5) 성냥의 나무부분: 인발하거나, 보다 보통은 평삭(平削)하거나 박피된 목재를 성냥 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제조된다. 이것은 또한 한 개의 블록 모양의 목재에서 대량으로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화학약품[예: 인산암모늄(ammonium phosphate)]으로 피복되는 수도 있는데, 만약 발화물을 두부에 부착시킨 경우에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접는 성냥을 제조하기 위하여 한 쪽 끝을 톱날 모양으로 하였거나 홈을 낸 나무로 만든 스트립(strip)도 포함한다.

- (6) 신발류용의 나무로 된 못과 편 : 성냥의 나무부분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나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원형·정사각형·삼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발류의 바닥과 힐(heel)을 고정시키도록 못 대신에 사용한다.
- (7) **제4419호**의 주방용품이 **아닌** 용량 측정기
- (8) 식탁용 나이프(knife)·스푼(spoon)·포크(fork)용 목재 손잡이
- (9) 운송이나 후속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교로 접합시킨 거칠게 썬 얇은 목재판으로 구성된 패널(panel)
- (10) 몰드(mould)되거나 몰드되지 않은 부분에 몰딩(moulding)을 덧붙여서 쌓아올린 몰드된 목재 (**제4418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성냥의 나무부분에 사용되는 나무로 만든 스트립(strip)(**제4404호**)
- (b) 한쪽 가장자리가 양측면에 심한 경사를 이루며 즉시 나무못으로 절단이 가능한 나무로 만든 스트립(strip) 모양의 미완성된 나무못(**제4409호**)
- (c) **제4417호**의 나이프(knife)[식탁용 나이프를 **제외한다**]과 그 밖의 공구나 도구용 목재 손잡이
- (d) **제46류**의 물품
- (e)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 (f) 지팡이와 그 부분품·우산류·승마용 채찍(**제66류**)
- (g) **제16부**의 기계와 기계류 부분품과 전기용품[예: **제8480호**의 목제의 몰딩 패턴(moulding pattern)]
- (h) **제17부**에 해당되는 물품[예를 들면, 보트(boat)·손수레·하마차·그 밖의 차량·수레 목공의 제품]
- (ij) **제90류**의 수학·제도용구·도량형기(용량측정용의 것은 **제외한다**)·그 밖의 물품
- (k) 개머리판과 그 밖의 무기의 부분품(**제9305호**)
- (l)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
* *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¹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아파르코	<i>Cariniana pyriformis</i> Miers.	베네주엘라	Bacu
아부라	<i>Hallea ciliata</i> Leroy (Syn. <i>Mitragyna ciliata</i> Aubr. & Pellegr.) <i>Hallea rubrostipulata</i> F. Leroy (Syn. <i>Mitragyna</i> <i>rubrostipulata</i> Harv.) <i>Hallea stipulosa</i> O. Kuntze (Syn. <i>Mitragyna stipulosa</i> O. Ktze)	앙골라 카메룬 콩고 코트디보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프랑스	Mivuku Elolom Vuku Bahia Elelon Elelom Nzam Subaha Abura Mboi Nzingu Mvuku Nzingu <i>Bahia</i>
아카시아	<i>Acacia auriculiformis</i> A.Cunn. ex Benth. <i>Acacia mangium</i> Willd.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태국 영국 미국	Black Wattle, Brown Salwood Mangge Hutan, Tongke Hutan Kayu Safoda Arr Kra Thin Tepas <i>Brown Salwood,</i> <i>Black Wattle</i> <i>Brown Salwood,</i> <i>Black Wattle</i>

¹주 :

세 번째 란은 수출국의 국가명과 함께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이 표준명(pilot-name)과 다른 경우에는 이탤릭체(italics)로 표시한다.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아까주다푸리케	<i>Khaya</i> spp. <i>Khaya ivorensis</i> A. Chev. (Syn. <i>Khaya klainei</i> Pierre ex A.Chev.)	앙골라 카메룬 코트디보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Undia Nunu N'Gollon Acajou Bassam Caoba del Galón Zaminguila Takoradi Mahogany Ogwango <i>Acajou Bassam</i> <i>Khaya Mahagoni</i> <i>African Mahogany</i>
	<i>Khaya anthotheca</i> C. DC.	앙골라 카메룬 콩고 코트디보아르 가나 우간다 프랑스 독일	N'Dola Mangona N'Dola Acajou Blanc, Acajou Krala Ahafo Munyama <i>Acajou Blanc</i> <i>Khaya Mahagoni</i>
	<i>Khaya grandifoliola</i> C. DC.	코트디보아르 나이지리아 우간다 프랑스 영국	Acajou à Grandes Feuilles Akuk, Benin Mahogany, Eri Kire <i>Acajou à Grandes Feuilles</i> <i>Heavy African Mahogany</i>
안조우아바	<i>Dacryodes klaineana</i> (Pierre) H. J. Lam (Syn. <i>Pahylobus deliciosa</i> Pellegr.)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가봉	Mouguenguéri Safukala Assia, Igaganga, Ossabel
아피나	<i>Strombosia glaucescens</i> Engl.	코트디보아르 나이지리아	Poe Itako, Otingbo
	<i>Strombosia pustulata</i> Oliv.		
아프로모지아	<i>Pericopsis elata</i> Van Meeuwen (Syn. <i>Afrormosia elata</i> Harms)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보아르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Obang Obang Assamela Kokrodua Ole, Bohala, Mohole <i>Assamela</i> , <i>Oleo Pardo</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아일레	<i>Canarium schweinfurtii</i> Engl.	앙골라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가나 적도 기니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 리온 영국	M'bili Abel Gberi M'bili Abeul, Ovili Bediwunua, Eyere Abe Elemi Mwafu Bidikala, M'bidikala Billi <i>Canarium</i>
아이에외코	<i>Dimorphandra</i> spp.		
아카	<i>Duboscia viridiflora</i> (K.Schum.) Mildbr.		
아코	<i>Antiaris toxicaria</i> subsp. <i>africana</i> (Engl.) C.C.Berg (Syn. <i>Antiaris africana</i> Engl.) <i>Antiaris toxicaria</i> subsp. <i>welwitschii</i> (Engl.) C.C.Berg. (Syn. <i>Antiaris welwitschii</i> Engl.)	앙골라 코트디보르 가나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Sansama Ako, Akede Chenchen, Kyenkyen Oro, Ogiovu Mlulu, Mkuzu Kirundu, Mumaka Bonkonko, Bonkongo <i>Antiaris</i> <i>Antiaris</i>
아코씨카	<i>Scottellia</i> spp. <i>Scottellia coriacea</i> A. Chev.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독일 이탈리아 영국	Ngobisolo Kelebicho Bilogh-Bi-Nkele Koroko, Kruku Korokon Odoko <i>Odoko</i> <i>Odoko</i> <i>Odoko</i>
아란	<i>Shorea albida</i> Sym.	말레이시아	Alan-Batu, Red Selangan, Meraka, Selangan Merah, Alan-Paya
알렙	<i>Desbordesia</i> <i>glaucescens</i> A. Chev. ex Hutch. & Dalziel	카메룬 콩고 가봉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Omang Benga Alep Kowo Benga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알마시고	<i>Bursera simaruba</i> (L.) Sarg.	남 아메리카 프랑스 영국	Almácigo, Almácigo Blanco, Chacaj Chaca-Jiote, Desnudo, Gumo-Limbo, Indio Desnudo, Indo Desnudo, Jiñocuave Bois d'encens, Chiboue, Chique, Gommier blanc Gum tree, Mexican White Beach, Turpentine Tree, West Indian Birch
알멘드릴로	<i>Taralea oppositifolia</i> Aubl. (Syn. <i>Coumarouna oppositifolia</i> (Willd.)Taub.)	남 아메리카	Cumaru Rana, Shihuahuaco, Tarala
알룸비	<i>Julbernardia seretii</i> Troupin (Syn. <i>Berlinia seretii</i> De Wild.)		
아마파	<i>Brosimum parinarioides</i> Ducke	브라질	Amapá Doce
아마폴라	<i>Pseudobombax ellipticum</i> (Kunth) Dugand		
암베로이	<i>Pterocymbium beccarii</i> K. Schum.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Kelumbuk, Papita Melembu, Teluto, Keluak Sawbya Taluto Oi-chang, Po-ikeng, Po-kradang
아모레뜨	<i>Brosimum guianense</i> (Aubl.) Huber	볼령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영국	Lette Mouchete, Mourette Cashiba Playa, Waira Caspi Belokoro, Peni-Paia, Poevinga Palo de Oro <i>Snakewood</i>
안디라	<i>Andira</i> spp.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멕시코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Acapurana, Almendo de Rio, Andira Uchi, Angelim Congo Moton Saint Martin Rouge Bat Seed, Koraro Maquilla Quinillo Colorado Rode Kabbes Angelin Sarrapio Montanero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안디로바	<i>Carapa guianensis</i> Aubl. <i>Carapa procera</i> DC.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가이아나 불령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나마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Andiroba, Carapa, Andirobeira, Andiroba Branca, Andiroba Vermelha Masabalo, Mazabalo Cedro Bateo, Cedro Macho Tangare, Figueroa Crabwood Carapa Bastard Mahogany, Cedro Macho Cedro Bateo, Cedro Macho Krappa Crappo Carapa, Masabalo
안둥	<i>Monopetalanthus</i> spp. <i>Monopetalanthus coriaceus</i> Morel <i>Monopetalanthus durandii</i> Hallé & Normand <i>Monopetalanthus hedinii</i> (A.Chev.) Aubrev. <i>Monopetalanthus heitzii</i> Pellegr. <i>Monopetalanthus letestui</i> Pellegr.	가봉	Andjung, Andoung de heitz, Ekop, Ekop-mayo, N'Douma, Zoele
안젤링	<i>Hymenolobium</i> spp.	브라질 불령 가이아나 수리남	Angelim Amarelo, Angelim da Mata, Angelim Pedra, Angelim Rosa, Mirarena, Sapupira Amarella Saint Martin Gris, Saint Martin Jaune Makkakabes, Saandoe
안젤링 하자도	<i>Marmaroxylon racemosum</i> (Ducke) Killip.	브라질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Angelim Rajado, Ingarana da Terra Firma, Ingarana, Bois Serpent Snakewood Bostamarinde Sneki Oedoe
안젤링 베르멜료	<i>Dinizia excelsa</i> Ducke	브라질 가이아나	Angelim Falso, Angelim Ferro, Angelim Pedra, Faveira Grande, Faveira Preta, Gurupa, Parakwa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앙구에크	<i>Ongokea gore</i> Pierre	카메룬 코트디보르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Andjek, Angueuk Kouero Andjek, Angueuk Boleko
아니에그레 (아닌그레)	<i>Aningeria</i> spp. <i>Aningeria robusta</i> Aubr. & Pellegr. <i>Aningeria altissima</i> Aubr. & Pellegr. (Syn. <i>Sideroxylon altissimum</i> Hutch. & Dalz.) <i>Pouteria superba</i> A.Chev. (Syn. <i>Aningeria superba</i> A. Chev. Syn. <i>Malacantha superba</i> Verm.) <i>Chrysophyllum giganteum</i> A.Chev (Syn. <i>Gambeyobotrys gigantea</i> (A.Chev.) Aubrev.)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보르 이디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Mukali, Kali M'Boul Mukali, N'Kali Aningueri blanc, Aniegre Kararo Muna, Mukangu Landojan Osan Tutu <i>Aningré-Tanganyika</i> Nuss <i>Tanganyika Nuss</i> <i>Aningeria</i>
아포비아오우	<i>Breviea leptosperma</i> (Baehni) Heine		
아라리바	<i>Centrolobium</i> spp.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파나마 파라과이 베네주엘라	Ararauba, Ararauva Guayacan Hobo, Balaustre Amarillo Guayaquil Amarillo Guayaquil Morosimo Balaustre, Guayacan Hobo
아리사우로	<i>Vatairea guianensis</i> Aubl.	브라질	Amargoso, Gele Kabbes, Inkassa, Yonko
아로마타	<i>Clathrotropis macrocarpa</i> Ducke	남 아메리카	Alma negra, Cabari, Sapan, Timbo Pau, Timbo Rana
아사쿠	<i>Hura crepitans</i> L.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가이아나 불령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미국	Ochoco Assacu Ceiba Lechosa Habillo Sandbox Bois du Diable, Sablier Catahua Possentrie, Possum, Ura Wood Ceiba Habillo, Jabillo <i>Possumwood</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아싸스	<i>Bridelia aubrevillei</i> Pellegr.		
아보디레	<i>Turraeanthus africana</i> Pellegr.	코트디와르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벨기에	Avodiré Apapaye Blimah-Pu Apaya M'Fube, Lusamba <i>Lusamba</i>
아워우라	<i>Julbernardia pellegriniana</i> Troupin (Syn. <i>Paraberlinia bifoliolata</i> Pellegr.)	카메룬 가봉 프랑스 독일	Ekop-Beli Awoura, Beli <i>Zebrai</i> <i>Zebrai</i>
아요스 (오베체)	<i>Triplochiton scleroxylon</i> K. Schum.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와르 적도 기니 가나 나이지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Ayous M'Bado Samba Ayus Wawa Arere, Obeche <i>Samba,</i> <i>Abachi</i> <i>Wawa</i> <i>Obeche or Samba</i>
아조베	<i>Lophira alata</i> Banks ex Gaertn. (Syn. <i>Lophira procera</i> A. Chev.)	카메룬 콩고 코트디와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독일 영국	Bongossi Bonkolé Azobé Akoga Akoga Kaku Ekki, Eba Hendui <i>Bonkole,</i> <i>Bongossi</i> <i>Ekki</i>
발라타 폼	<i>Chrysophyllum sanguinolentum</i> (Pierre) Baehni	남 아메리카	Assopokballi, Balata Pommier, Balata Saignant, Barataballi, Bois Cochon, Suitiamin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발라우 레드	<i>Shorea</i> spp.	인도네시아	Belangeran, Balau Merah
	<i>Shorea balangeran</i> (Korth.) Burck	말레이시아	Balau Laut Merah, Damar Laut Merah, Balau Membatu, Balau Merah, Red Selangan Batu, Membatu, Seri, Selangan Batu Merah, Seraya Sirup, Selangan Batu No. 1, Sengawan, Semayur, Empenit-Meraka
	<i>Shorea collina</i> Ridl.		Guijo, Gisok
	<i>Shorea guiso</i> Blume	필리핀	
	<i>Shorea inaequilateralis</i> Sym.	태국	Makata, Chankhau
	<i>Shorea kunstleri</i> King	독일	<i>Red Balau</i>
	<i>Shorea ochrophloia</i> Strugnell ex Desch.	영국	<i>Red Balau</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발라우 옐로우	<i>Shorea</i> spp.	인도 인도네시아	Sal Bangkirai, Agelam, Benuas, Brunas, Selangan batu, Kumus, Kedawang, Pooti
	<i>Shorea argentea</i> C.F.C. Fisher		
	<i>Shorea atrinervosa</i> Sym.		
	<i>Shorea balangeran</i> (Korth.) Burck		
	<i>Shorea barbata</i> Brandis	말레이시아	Damar laut Kumus, Sengkawan Darat, Balau Kumus, Balau Simantok, Selangan Batu No.1, Selangan Batu No.2
	<i>Shorea ciliata</i> King		Thitya
	<i>Shorea exelliptica</i> W. Meijer		Yakal, Gisok, Malaykal
	<i>Shorea foxworthyi</i> Sym.	미얀마 필리핀	Chan, Ak or Aek, Pa-Yom Dong
	<i>Shorea gisok</i> Foxw.		
	<i>Shorea glauca</i> King		
	<i>Shorea laevis</i> Ridl.	태국	
	<i>Shorea laevifolia</i> (Parijs.) Endert		
	<i>Shorea materialis</i> Ridl.	독일 영국	<i>Balau</i> <i>Balau</i> , <i>Selangan Batu</i>
	<i>Shorea maxwelliana</i> King		
	<i>Shorea obtusa</i> Wall. ex Blume		
	<i>Shorea roxburghii</i> G. Don		
	<i>Shorea seminis</i> V. Sl.		
<i>Shorea submontana</i> Sym.			
<i>Shorea sumatrana</i> Sym.			
<i>Shorea scrobiculata</i> Burck			
<i>Shorea superba</i> Sym.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발사	<i>Ochroma lagopus</i> Sw. <i>Ochroma pyramidale</i> (Cav. ex Lam.) Urb.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중앙 아메리카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Tami Pau de Balsa Lanu Balsa Balsa Algodon Lanilla Guano, Balsa Gatillo Balsa, Topa, Palo de Balsa Bois flot Balso
발사모	<i>Myroxylon balsamum</i> Harms.	멕시코 페루 프랑스	Arbol del Bálsamo, Bálsamo, Bálsamo de Perú o de Tolu Myroxylon <i>Baumier du Pérou</i>
방가-왕가	<i>Amblygonocarpus andongensis</i> Exell & Torre (Syn. <i>Amblygonocarpus obtusangulus</i> (Oliv.) Harms)		
바로말리	<i>Catostemma fragrans</i> Benth.	남 아메리카	Arenillo, Baramalli, Baraman, Baramanni, Flambeau Rouge, Kajoewaballi
바스랄로쿠스	<i>Dicorynia guianensis</i> Amshoff & Vouacapoua	브라질 불령 가이아나 수리남	Angelica do Para, Tapainuna Angeliq Basralokus, Barakaroeballi
바타이	<i>Paraserianthes falcataria</i> (L.) I.C.Nielsen (Syn. <i>Albizia falcataria</i> (L.) Fosberg)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Falcata, Moluccan sau Jeungjing, Sengon laut, Sikat Batai, Kayu machis, Puah <i>Indonesian albizia</i>
바티바트라	<i>Enterolobium schomburgkii</i> Benth.	브라질 불령 가이아나 수리남	Batibatra, Fava de Rosca, Fava Orelha de Macaco, Fava Orelha de Negro, Timbauba, Timborana Acacia Franc, Bougou Bati Batra Tamaren Prokon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베누앙	<i>Octomeles sumatrana</i> Miq.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Benuang, Binuang Bini, Winuang Erima, Irima, Ilimo Binuang
베테 (만소니아)	<i>Mansonia altissima</i> A. Chev.	카메룬 코트디보르 가나 나이지리아	Koul Bété Aprono Ofun
빌링가	<i>Nauclea diderrichii</i> Merr. (Syn. <i>Sarcocephalus diderrichii</i> De Wild.) Syn. <i>Nauclea trillesii</i> Merr.) <i>Nauclea xanthoxylon</i> (A.Chev.) Aubrév. (Syn. <i>Sarcocephalus</i> <i>xanthoxylon</i> A. Chev.) <i>Nauclea gillettii</i> De Wild. Merr.	앙골라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보르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우간다 독일 영국	Engolo Opepe Akondoc Kilu Linzi, Mokesse, N'Gulu-Maza Badi Bonkingu, N'Gulu-Maza Aloma Kusia Bilinga Opepe Bundui Kilingi <i>Aloma</i> <i>Opepe</i>
빌란	<i>Eusideroxylon zwageri</i> Teijsm. & Binn.	인도네시아 필리핀	Onglen, Un Tambulian
빈탕오르	<i>Calophyllum</i> spp.	인도네시아 마다카스카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 칼레도니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솔로몬 군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바누아투	Bintangur Vintanina Bintangor, Penaga Sultan Champa Tamanou Calophyllum Bansanghal, Vutalau Koila Domba-Gass Poon Cong, Mu-u Tamanou
비티스	<i>Madhuca</i> spp.	동남 아시아	Belian, Betis
보디오아	<i>Anopyxis klaineana</i> Pierre ex Engl. (Syn. <i>Anopyxis ealaensis</i> (De Wild) Sprague)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로즈우드	<i>Aniba rosaeodora</i> Ducke (Syn. <i>Aniba duckei</i> Kosterm.)	브라질	Pau-Rosa
보망가	<i>Brachystegia laurentii</i> Louis. <i>Brachystegia mildbraedii</i> Harms (Syn. <i>Brachystegia nzang</i> Pellegr.) <i>Brachystegia zenkeri</i> Harms	카메룬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프랑스 영국	Ekop-Evene, Ekop-Leke Bomanga Bomanga, Nzang Yegna <i>Ariella</i> <i>Ariella</i>
보세, 밝은 색	<i>Guarea cedrata</i> Pellegr. <i>Guarea laurentii</i> De Wild.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Bossé Kwabohoro Obobo Nofua Bosasa <i>Bossé</i> <i>Scented Guarea</i>
보세, 짙은 색	<i>Guarea thompsonii</i> Sprague & Hutch.	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Mutigbanaye Bolon Obobo Nekwi Diampi <i>Diampi</i> <i>Black Guarea</i>
보통	<i>Barringtonia asiatica</i> (L.) Kurz.	동남 아시아	Fish Poison Tree, Sea Poison Tree
브레우-수쿠루바	<i>Trattinickia</i> spp.	브라질	Amesclão, Breu Preto, Mangue, Morcegueira, Ulu
부빙가	<i>Guibourtia</i> spp. <i>Guibourtia demeusei</i> (Harms) J. Léon. <i>Guibourtia pellegriniana</i> J. Léon. <i>Guibourtia tessmannii</i> (Harms) J. Léon.	카메룬 가봉 영국	Essingang Buvenga <i>Kevasingo</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부라다	<i>Parinari campestris</i> Aubl.	브라질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주엘라	Parinari Fongouti Koko, Galette Blanc, Gris-Gris Blanc Broad-Leaved Burada, Burada, Candlewood, Kupisini, Mahaicaballi, Makarai, Wamuk, Wamuku Behoerada, Foengoe, Koebesini Guaray, Merecurillo
버마 흑단(黑檀 ; ebony)	<i>Diospyros burmanica</i> Kurz.	미얀마	Burmese Ebony, Hpunmang, Maimakho-Ling, Mia-Mate-Si, Te
버마 자단(紫檀 ; rosewood)	<i>Dalbergia oliveri</i> Gamble ex Prain	미얀마	Ching-Chan, Ket-Daeng
부세히	<i>Lebrunia bushaie</i> Staner		
카브레우바	<i>Myrcarpus frondosus</i> Allem.	남 아메리카	Cabreúva Parda, Ibirá, Incienso, Oleo de Caboreiba, Oleo de Macaco, Oleo Pardo, Pagé, Payò
카킴보	<i>Cariniana decandra</i> Ducke		
캄바라 (자보티)	<i>Erisma</i> spp. <i>Erisma uncinatum</i> Warm.	브라질 볼령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독일	Quarubarana, Jaboty, Cedrinho, Cambara, Quarubatinga, Quaruba, Vermelha Jaboty, Manonti Kouali, Felli Kouali Cambara Singri-Kwari Mureillo Cambara
카날레떼	<i>Cordia</i> spp.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베네주엘라	Loro Negro Louro Pardo Canalete Anacahuite, Baria Amapa Asta, Bocote, Cupane, Siricote Canalete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카넬로	<i>Nectandra</i> spp. <i>Ocotea</i> spp.	브라질 중앙 아메리카 에쿠아도르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Louro Louro Branco, Louro Inhamui Aguacatillo Laurel Amarillo Laurel, Canelo Amarillo, Jigua Amarillo Tinchi Cedre Apici Kereti-Silverballi Moena Amarilla Pisi Laurier Laurel
카넬론	<i>Aniba guianensis</i> Aubl.		
카포모	<i>Brosimum alicastrum</i> Sw.	남 아메리카	Charo, Ramón
카라콜리	<i>Anacardium excelsum</i> Skeels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Caju Assu, Caju da Matta Caracoli Maranon Espavel Caracoli
카스타네이로 파라	<i>Bertholletia excelsa</i> Humb. & Bonpl.	브라질 콜롬비아 프랑스 영국	Castanha-do-Brasil, Castanha-do Pará, Castanheira Canstana do Brasil, Canstana do Pará, Castaña, Castanha-do-Maranhao, Nuez del Brasil <i>Châtaigne du Brésil,</i> <i>Noix du Brésil</i> <i>Noix du Pará</i> <i>Brazil nut,</i> <i>Butter nut,</i> <i>Cream nut,</i> <i>Para nut</i>
카스타놉시스	<i>Castanopsis</i> spp.		
카티구아	<i>Trichilia catigua</i> A. Juss.		
카티보	<i>Prioria copaifera</i> Griseb.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주엘라	Cativo, Trementino Amasamujer Copachu Cativo, Camibar Cativo Muramo, Curucaí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세드로	<i>Cedrela</i> spp. <i>Cedrela angustifolia</i> DC. (Syn. <i>Cedrela lilloi</i> C. de Candolle) <i>Cedrela fissilis</i> Vell. <i>Cedrela odorata</i> L.	브라질 볼림 가이아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수리남	Cedro Cedrat, Cedro Red Cedar Cedro, Cigarbox Ceder
세드로이	<i>Tapirira</i> spp. <i>Tapirira guianensis</i> Aubl.	가이아나	Warimia
아프리카 셀티스 (다이아니아, 오히아)	<i>Celtis</i> spp. <i>Celtis adolfi-friderici</i> Engl. <i>Celtis brieyi</i> De Wild. <i>Celtis gomphophylla</i> Baker (Syn. <i>Celtis durandii</i> Engl.) <i>Celtis mildbraedii</i> Engl. <i>Celtis tessmannii</i> Rendle <i>Celtis zenkeri</i> Engl.	베닝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독일 영국	Bawe Odou, Odou Vrai Balze Bolunde, Diania, Kayombo Edou, Kiliakamba Asan, Ba, Lohonfe Engo, Celtis, Esa-Kokoo, Esa-Kosua Shiunza Lokonfi Dunki, Ita, Zuwo Ekembe-Bakaswa, Namanuka <i>Celtis</i> <i>Red-Fruited White-Stinkwood</i>
세레예이라	<i>Amburana cearensis</i> (Allemão) A. C. Sm.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Roble Criollo, Roble del País, Roble, Palo Trébol, Trébol Roble Americano Amburana, Cerejeira, Cumarú de Cheiro, Umburana Trébol Ishpingo, Sorioco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참괭	<i>Michelia</i> spp. (Syn. <i>Magnolia</i> spp.)	미얀마 필리핀	Saga, Sagawa, Sanga Hangilo, Sandit
채참	<i>Metopium brownei</i> Roxb.	중앙 아메리카 및 남 아메리카	Caribbean Rosewood Black Poisonwood
챙알	<i>Balanocarpus heimii</i> King.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Penak-Bunga, Penak-Sabut, Penak-Tembaga Chengal Takian Chan
치차 / 씨사	<i>Sterculia</i> spp. <i>Sterculia apetala</i> (Jacq.) Karst.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에쿠아도르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멕시코 페루 푸에르토리코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Mani Achicha, Chicha, Tacacazeiro Camajura Anacaguaita Cacao de Mote, Sapote, Saput, Zapote Kobe Maho Bellota, Chiapas Huarmi-Caspi, Zapote Silvestre Anacaguaita Jahoballi, Kobehe, Okro-Oedoe Mahoe Camoruco, Mayagua, Sunsun
코코볼로	<i>Dalbergia retusa</i> Hemsl.		
코미노 크레스포	<i>Aniba perutilis</i> Hemsl.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영국	Coto, Coto Piquiente Laurel Amarelo, Pau Rosa Aceite de Palo, Caparrapi, Chachajo, Comino, Comino Canelo, Comino Real, Laurel Comino, Punte Comino, Ishpingo Chico, Moena Amarilla, Muen Negro <i>Keriti</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콩고탈리	<i>Letestua durissima</i> Lecomte	콩고 가봉	Congotali Kong-Afane
코페이버	<i>Copaifera</i> spp.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주엘라	Timbo-y-Ata Copaibarana, Copahyba Canime, Copaiba Cabino Blanco, Camiba Cabimo, Palo de Aceite
아프리카 코르디아	<i>Cordia</i> spp. <i>Cordia africana</i> Lam. (Syn. <i>Cordia abyssinica</i> R. Br. Syn. <i>Cordia holstii</i> Gürke ex Engl.) <i>Cordia millenii</i> Baker <i>Cordia platythyrsa</i> Baker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이디오피아 가봉 나이지리아 우간다 영국	Ebais, Ebe Sumba Makobokobo, Mringamringa, Mringaringa, Mukumari Auhi, Awhi, Ekhi Ebais, Ebe Omo Mukebu <i>African Cordia,</i> <i>East African cordia,</i> <i>Large-leafed cordia,</i> <i>Sudan teak</i>
코올라	<i>Coula edulis</i> Baill.		
아프리카 크랩우드	<i>Carapa</i> spp. <i>Carapa grandiflora</i> Sprague	코트디와르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우간다 미국 영국	Alla, Dona Bete, Krupi Toon-kor-dah Agogo Gobi, Kowi Mujogo, Mutongana <i>African Crabwood</i> <i>African Crabwood</i>
크리스토탈 그라나딜로	<i>Platymiscium</i> <i>pleiostachyum</i> Donn. Sm.	남 아메리카	Jacaranda do brejo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쿠마루	<i>Dipteryx</i> spp.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가이아나 불령 가이아나 온두라스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Almendrillo Cumaru, Cumaru Ferro, Cumarurana Sarrapia Kumaru, Tonka Bean Gaiac de Cayenne, Tonka Ebo Charapilla, Shihuahuaco Amarillo Koemaroe, Tonka Sarrapia
쿠피우바	<i>Goupia glabra</i> Aubl.	브라질 콜롬비아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영국	Cachaceiro, Copiuva, Cupiuba Chaquiro, Saino, Sapino Goupi Copi, Kabukalli Capricornia Koepi Congrio Blanco <i>Kabulalli</i>
쿠루파이	<i>Anadenanthera colubrina</i> (Vell.) Brenan	남 아메리카	Angico, Cebil, Huilco, Vilca, Wilco
다베마	<i>Piptadeniastrum africanum</i> Brenan (Syn. <i>Piptadenia africana</i> Hook. f.)	카메룬 콩고 코트디보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시에라 리온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Atui N'Singa Dabema Tom Toum Dahoma Mbeli Agboin, Ekhimi Mpewere Mbele, Guli Bokungu, Likundu <i>Dahoma,</i> <i>Ekhimi</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디베토우	<p><i>Lovoa</i> spp.</p> <p><i>Lovoa brownii</i> Sprague</p> <p><i>Lovoa swynnertonii</i> Baker f.</p> <p><i>Lovoa trichiloides</i> Harms (Syn. <i>Lovoa klaineana</i> Pierre)</p>	<p>카메룬 코트디보아르 적도 기니</p> <p>가봉 가나</p> <p>케냐</p> <p>나이지리아</p> <p>시에라 리온 콩고민주공화국</p> <p>우간다</p> <p>프랑스</p> <p>영국</p> <p>미국</p>	<p>Bibolo Dibétou Nivero, Embero Eyan Dubini-Biri, Mpengwa Mukongoro Mukusu Apopo, Sida, Anamenila Wnaimei Lifaki-Maindu, Bombulu Nkoba</p> <p><i>Noyer d'Afrique, Noyer du Gabon African Walnut, Tigerwood Tigerwood, Uganda Walnut Congowood</i></p>
디포우	<p><i>Morus lactea</i> Mildbr.</p> <p><i>Morus mesozygia</i> Stapf</p>	<p>포루투갈 프랑스 영국</p>	<p><i>Chocobondo Mûrier du Sénégal East African mulberry, African mulberry, Uganda mulberry</i></p>
디비다	<p><i>Scorodophloeus zenkeri</i> Harms</p>		
드조하르	<p><i>Senna siamea</i> (Lam.) H.S.Irwin & Barneby. (Syn. <i>Cassia siamea</i> (Lam.) H.S.Irwin & Barneby)</p>	<p>동남 아시아</p> <p>프랑스</p>	<p>Bombay Blackwood, Iron Wood, Kassod Tree, Siamese Senna, Thailand Shower, Yellow Cassia</p> <p><i>Casse de Siam</i></p>
도우카 (마코레)	<p><i>Tieghemella</i> spp.</p> <p><i>Tieghemella africana</i> Pierre (Syn. <i>Dumoria africana</i> Dubard)</p> <p><i>Tieghemella heckelii</i> Pierre ex Dubard (Syn. <i>Mimusops heckelii</i> Hutch. & Dalz.)</p>	<p>코트디보아르 가나</p> <p>적도 기니 가봉</p>	<p>Makoré Baku, Abacu Okola Douka</p>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도우시에	<i>Afzelia africana</i> Smith <i>Afzelia pachyloba</i> Eggeling & Dale <i>Afzelia bipindensis</i> Harms (Syn. <i>Afzelia bella</i> Harms) <i>Afzelia cuanzensis</i> Oliv.	앙골라 카메룬 콩고 코트디보르 가나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 리온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포르투갈 영국 미국	N'kokongo Uvala M'Banga, Doussié N'Kokongo Lingue, Azodau Papao Mussacossa, Chanfuta Apa, Aligna Lingue Kpendei Mkora, Mbembakofi Bolengu <i>Afzelia</i> <i>Chafuta</i> <i>Afzelia</i> <i>Afzelia</i>
드라고	<i>Pterocarpus officinalis</i> Jacq.	남 아메리카 프랑스 영국	Lagunero, Pallo de Poyo, Sangre, Sangre de Drago, Sangrillo <i>Mangle-médaille,</i> <i>Mangle-rivière</i> <i>Palétuvier,</i> <i>Sang-dragon</i> <i>Blood-wood,</i> <i>Dragon's-blood</i>
두아방가	<i>Duabanga grandiflora</i> (Roxb. ex DC.) Walpers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국 베트남	Lampati Ramdala Kalam Magas, Magaswith, Phay-Sung, Tagahas Myaukngo Duabanga Loktob Linkwai Phay
두칼리	<i>Parahancornia fasciculata</i> (Poir.) Benoist		
두리안	<i>Durio</i> spp.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영국	Durian Apa-Apa, Bengang, Durian, Durian Isa, Punggai <i>Durion</i> <i>Durian</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아프리카 흑단(黑檀 ; ebony) (마다가스카르 흑단)	<i>Diospyros</i> spp. <i>Diospyros crassiflora</i> Hiern. (Syn. <i>Diospyros evila</i> Pierre ex A.Chev.) <i>Diospyros perrieri</i> Jum.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적도 기니 가봉 나이지리아 독일 영국	Cubaga, Ebène Epinde-pinde, Mavini, Mevini, Ndou Bingo, Ngoubou Mopini Ébano Evila Abokpo, Kanran, Nyareti Osibin <i>Afrikanisches Ebenholz</i> <i>African ebony</i> , <i>Madagascar ebony</i>
아시아 검정 흑단(黑檀 ; ebony)	<i>Diospyros ebenum</i> J. Koen. <i>Diospyros vera</i> (Lour.) A.Chev. (Syn. <i>Diospyros ferrea</i> Willd.) <i>Diospyros melanoxylon</i> Roxb. <i>Diospyros mollis</i> Griff. <i>Diospyros mun</i> A.Chev. & Lecomte		
아시아 나뭇결있는 흑단(黑檀 ; ebony)	<i>Diospyros celebica</i> Bakh. <i>Diospyros marmorata</i> R.Park. <i>Diospyros rumphii</i> Bakh.		
에비아라	<i>Berlinia bracteosa</i> Benth. <i>Berlinia confusa</i> Hoyle. <i>Berlinia grandiflora</i> Hutch. & Delz.	앙골라 베냉 카메룬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독일 영국	M'possa Bagbe Abem, Essabem M'Possa M'Possa Melegba, Pocouli Ebiara Berlinia Ekpogoi Sarkpei <i>Berlinia</i> <i>Berlinia</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에카바	<i>Tetraberlinia</i> spp. <i>Tetraberlinia bifoliolata</i> (Harms) Hauman (Syn. <i>Berlinia bifoliolata</i> Harms) <i>Tetraberlinia tubmaniana</i> J. León.	카메룬 콩고 적도 기니 가봉 라이베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Ekop-Ribi Eko-Andoung Ekop Ekop-Andoung Hoh, Sikon <i>Ekop</i> <i>Ekop</i> <i>Ekaban</i> <i>Tetraberlinia</i>
에코우네	<i>Coelocaryon preussii</i> Warb.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나이지리아	Nom Eteng Kolomeko Kikubi-Lomba Lomba-Kumbi Ekoune, Ekun Ekoune, Ekun Egbenrin
에미엔	<i>Alstonia boonei</i> De Wild. <i>Alstonia congensis</i> Engl. (Syn. <i>Alstonia gillettii</i> De Wild.)	나이지리아 우간다 영국	Awun, Egbu Mubajangalabi, Mujua, Mukoge, Musoga <i>Alstonia</i> , <i>Pattern wood</i> , <i>Stool wood</i>
에세쌍	<i>Ricinodendron</i> spp. <i>Ricinodendron africanum</i> Müll. Arg. <i>Ricinodendron heudelotii</i> Pierre ex Henckel <i>Ricinodendron rautanenii</i> Schinz.	베닝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잠비크 토고 영국	Muawa Erimado Erimado Erimado Muawa Erimado <i>African Nut Tree</i> , <i>African Wood</i> , <i>African Wood-Oil Nut Tree</i> , <i>Cork Wood</i>
에씨아	<i>Petersianthus macrocarpus</i> Liben (Syn. <i>Petersia africana</i> Welw.)	영국	<i>Esia</i>
에쏘올라	<i>Plagiostyles africana</i> Prain ex De Wild.		
에티모에	<i>Copaifera mildbraedii</i> Harms <i>Copaifera salikounda</i> Heckel	베닝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Akpaflo Essak Bilombi Yama Etimolé Bofelele Andem-Evine Entedua Ovbialeke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에베우쓰	<i>Klainedoxa buesgenii</i> Engl. <i>Klainedoxa gabonensis</i> Pierre ex Engl.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Ngon Oboro Kuma-kuma Kroma Ikele, Kuma-kuma Eves Eveuss Kruma Odudu
에비노	<i>Vitex ciliata</i> Pellegr. <i>Vitex pachyphylla</i> Baker		
에예크	<i>Pachyelasma tessmannii</i> Harms		
에용	<i>Eribroma oblongum</i> Pierre ex A.Chev. (Syn. <i>Sterculia oblonga</i> Masters)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Bongele, Eyong Bongo Bi N'Chong, N'Zong N'Chong, N'Zong Ohaa Okoko <i>White Sterculia,</i> <i>Yellow Sterculia</i>
에요움	<i>Dialium</i> spp. <i>Dialium bipindense</i> Harms. <i>Dialium dinklagei</i> Harms. <i>Dialium aubrevillei</i> Pellegr. <i>Dialium pachyphyllum</i> Harms.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네비소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Mfang, M'Fan Penzi Afambeou, Kofina Eyoom, Omvong Pau Veludo Ciania, Gbelle-Flu, Gia Kaba Ziba Bongola, Kasudu
파로	<i>Daniellia</i> spp. <i>Daniellia klainei</i> Pierre <i>Daniellia ogea</i> Rolfe <i>Daniellia thurifera</i> Bennet	베닝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독일 영국	Jatin Nsou Singa N'Dola Faro Bolengu N'Su Lonlaviol Ogea Oziya Gnessi <i>Daniellia</i> <i>Ogea</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파페이라	<i>Parkia multijuga</i> Benth.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Fava Araba Tucupi, Fava Bolota, Faveira, Parica, Visgueiro Huarango, Rayo Tangama Dodomissinga, Kouatakaman Black Manariballi, Ipanai, Uya Goma Pashaco Kwatakama Cascaron
파페이라, 쓴 것 (bitter)	<i>Vatairea paraensis</i> Ducke	브라질 콜롬비아 가이아나 볼령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수리남	Angelim Amargoso, Aracuy, Fava Amarela, Fava Amargosa, Faveria Amarela, Faveira Amargosa, Faveria Bolacha Guerra, Maqui Arisauro, Bastard Purpleheart, Bauwau Inkassa, Yongo Amargo Amargo Mari-Mari, Marupa del Bajo Arisoeroe, Gele Kabbes, Geli-Kabissi
피지 스테쿨리아	<i>Sterculia vitiensis</i> Seem.	오세아니아	Waciwaci
프라미레	<i>Terminalia ivorensis</i> A. Chev.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영국	Lidia Framiré Emeri Baji Idigbo, Black Afara Baji <i>Idigbo</i>
포르미구에이로	<i>Triplaris cumingiana</i> Fisch. & C.A.Mey. (Syn. <i>Triplaris guayaquilensis</i> Wedd.)	에쿠아도르	Fernansanchez
프레이조	<i>Cordia goeldiana</i> Hub.	브라질	Freijo Frei-Jorge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푸마 (프로마거)	<i>Ceiba pentandra</i> (L.) Gaertn. (Syn. <i>Ceiba thoningii</i> A. Chev. Syn. <i>Bombax pentandrum</i> L.)	카메룬 콩고 코트디보아르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독일 영국	Doum Fuma Enia, Fromager Onyina Ghe Okha, Araba Ngwe, Banda Fuma <i>Fromager</i> <i>Ceiba</i> <i>Ceiba</i>
가이악	<i>Guaiacum</i> spp.	멕시코 베네주엘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Palo Santo, Guayacancillo Guayacán <i>Gaiac</i> <i>Mexiko-Pockholz</i> <i>Pockhout</i> <i>Guayacán</i> <i>Guaiacum Wood</i>
갈락우드	<i>Bulnesia sarmientoi</i> Lorentz ex Griseb.		
게일 실버발리	<i>Aniba hypoglauca</i> Sandwith (Syn. <i>Aniba ovalifolia</i> Mez.)	남 아메리카	Gale Silverballi, Garl, Kawioi, Kurero Shiruaballi, Kurero Silverballi, Moena Puchiri, Silverballi, Yellow Silverballi, Yellow Sweetwood
가벨란	<i>Schizolobium amazonicum</i> Huber ex Ducke		Pashaco, Pino Chuncho
가벨란 블랑코	<i>Oreomunnea pterocarpa</i> Oerst.		
게룽강	<i>Cratoxylum arborescens</i> (Vahl) Bl. <i>Cratoxylum arborescens</i> var. <i>miquelli</i> King <i>Cratoxylum glaucum</i> Korth. <i>Cratoxylum lingustrinum</i> Bl. <i>Cratoxylum polyanthum</i> Korth.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Gerunggang Mapat Mulu Selunus Gonggang Serungan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게루투	<i>Parashorea densiflora</i> Slooten & Sym. <i>Parashorea lucida</i> (Miq.) Kurz <i>Parashorea parvifolia</i> Wyatt-Smith ex P.S.Ashton <i>Parashorea smythiesii</i> Wyatt-Smith ex P.S.Ashton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Tavoy Wood White Meranti Mai Hao Gerutu, Gerutu Pasir, Heavy White Seraya, Meranti Gerutu, Meruyun, Urat Mata Batu, Urat Mata Bukit, Urat Mata Daun Kechil, Khai Khieo
게움비	<i>Sindoropsis letestui</i> (Pellegr.) J. Léon. (Syn. <i>Copaifera letestui</i> Pellegr.)	카메룬 가봉	Lumbandjii Gheombi, Ngom
고이아파오	<i>Chrysophyllum lucentifolium</i> Cronquist (Syn. <i>Planchonella</i> <i>pachycarpa</i> Pires Syn. <i>Pouteria pachycarpa</i> Pires Syn. <i>Syzygiopsis</i> <i>pachycarpa</i> Ducke)	브라질	Abiu Casca, Abiurana, Abiurana Amarela, Abiurana Goiaba, Goiabao, Goyabao
곰베	<i>Didelotia africana</i> Baill. <i>Didelotia idae</i> Oldem., de Wit & Léon. <i>Didelotia letouzeyi</i> Pellegr.	카메룬 코트디보아르 가봉 라이베리아 시에라 리온	Ekop-Gombe, Gombe Broutou Angok Bondu Timba
그린하트	<i>Chlorocardium rodiei</i> (Schomb.) Rohwer, H.G.Richt. & van der Werff	브라질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주엘라	Bibiru, Itauba Branca Bibiru, Demerara, Greenheart Beeberoe Groenhart Sipiroe Viruviru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아프리카 그레나달	<i>Dalbergia melanoxylon</i> Gutif. & Perr.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이디오피아 케냐 나미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영국	Tabum Kafundula Zobbi, Zebe Kikwaju, Mpingo, Poyi Driedoring Ebbehout, Mokelete, Sebrahout, Swartdriedoring, Umbambangwe Motangu Chinsale, Kasalusalu, Mfwankomo, Mkelete, Mkumudwe, Msalu, Mukelete, Musonkomo Murwiti, Pulupulu <i>African blackwood,</i> <i>African ebony,</i> <i>Mugembe,</i> <i>Poyi</i>
그리그리	<i>Licania</i> spp.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멕시코 페루 베네주엘라	Anauerá, Caraipé, Turiuva Carbonero Zapote Kautaballi, Konoko, Zapote Carbonero, Zapote Carbonero
구아가라	<i>Sabal mauritiiformis</i> Griseb. & H.Wendl.	남 아메리카	Catarata, Palma Amarga, Palma de Guagara, Palma de Vaca, Palmiche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헤베아(파라 고무나무)	<i>Hevea brasiliensis</i> (Willd. ex A.Juss.) Müll.Arg.	브라질 가이아나 말레이시아 페루 태국 베네주엘라 영국 미국	Mapalapa, Seringa, Seringueira Hatti Hevea Wood Jeve, Shirenga Rubber Tree Arbol de Caucho <i>Para Rubber Tree</i> <i>Rubber Wood</i>
히구에틸라	<i>Micandra spruceana</i> (Baill.) R. Shultes	콜롬비아 페루 베네주엘라	Reventillo, Yetcha Carapacho, Higuerilla Negra, Shiringa Masha Cunuri
후루아사	<i>Abarema jupunba</i> (Willd.) Britton & Killip	가이아나	Ingarana, Tento Azul
이아탄자	<i>Albizia angolensis</i> Welw. <i>Albizia ferruginea</i> Benth.	앙골라 베냉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Zanzangue Agla Nyinfun Evouvous Sifou-Sifou Yatanza latandza Awiemfo-Samina, Okuro Musase Ayinre-Ogo Mugavu, Nongo Elongwamba, Okuru <i>West African Albizia</i>
이비라 피타	<i>Peltophorum dubium</i> (Spreng.) Taub (Syn. <i>Peltophorum vogelianum</i> Benth.)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Canaffistula Guarucaia Yvyrapyta
이테와	<i>Haplormosia monophylla</i> Harms	라이베리아	Black Gum, Liberian Black Gum
이가강가	<i>Dacryodes igaganga</i> Aubr. & Pell.		
이롬바	<i>Pycnanthus angolensis</i> (Welw.) Warb. (Syn. <i>Pycnanthus kombo</i> Baill.) Warb.	앙골라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콩고민주공화국	Ilomba Eteng Ilomba Walélé Calabo Eteng Otié Akomu Kpoyéi Lolako, Lejonclo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임부아	<i>Ocotea porosa</i> Barosso (Syn. <i>Phoebe porosa</i> (Nees & Mart.) Mez.)	브라질 남 아메리카 영국 미국	Canela, Imbuia, Embuia Laurel <i>Brazilian Walnut</i> <i>Imbuya</i> , <i>Brazilian Walnut</i>
잉가	<i>Inga spp.</i>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링 가이아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페루 수리남	Inga Inga, Ingazeira, Inga-Chi-Chi, Inga-Chi-Chica Bois Pagode, Bougouni, Lebi Oueko, Oueko Kurang, Kwari, Kwarye, Maporokon, Yokar Guama Shimbillo Abonkini, Prokonie
잉인	<i>Pentacme siamensis</i> (Miq.) Kurz		
인약	<i>Antonia ovata</i> Pohl		
이페	<i>Handroanthus heptaphyllus</i> (Vell.) Mattos (Syn. <i>Tabebuia ipe</i> (Mart.) Standl.) <i>Handroanthus capitatus</i> (Bur & K.Schum) Sanwith (Syn. <i>Tabebuia capitata</i> Sandw.) <i>Handroanthus serratifolius</i> (Vahl) S.O.Grose (Syn. <i>Tabebuia serratifolia</i> Nichols) <i>Handroanthus impetiginosus</i> (Mart. ex DC.) Mattos (Syn. <i>Tabebuia impetiginosa</i> (Mart.) Standl.)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중앙 아메리카 콜롬비아 볼링 가이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Lapacho Ipé, Lapacho, Tajibo Ipé, Ipé Roxo, Pau d'Arco Amapa, Prieta, Cortez, Guayacan, Cortés Canaguata, Polvillo, Roble Morado Ebene verte Hakia, Ironwood Lapacho Negro Tahuari Negro, Ebano Verde Groenhart Poui, Yellow Poui Acapro, Araguaney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이로코	<p><i>Milicia</i> spp.</p> <p><i>Milicia excelsa</i> C.C. Berg (Syn. <i>Chlorophora excelsa</i> (Welw.) Benth.)</p> <p><i>Milicia regia</i> C.C. Berg (Syn. <i>Chlorophora regia</i> A. Chev.)</p>	<p>앙골라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동 아프리카</p> <p>적도 기니 가봉</p> <p>가나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콩고민주공화국</p> <p><i>벨기에</i></p>	<p>Moreira Abang Kambala Iroko Mvuli, Mvule Abang Abang, Mandji Odum Semli Tule Mufula Iroko Semli Lusanga, Molundu, Mokongo</p> <p><i>Kambala</i></p>
이타우바	<i>Mezilaurus</i> spp.	<p>브라질 볼령 가이아나 수리남</p>	<p>Louro Itauba Taoub Jaune Kaneelhout</p>
이쭌베	<i>Testulea gabonensis</i> Pellegr.	<p>카메룬 콩고 가봉</p>	<p>Rone N'Gwaki Ake, Akewe, Izombe, N'Komi</p>
자카로바	<i>Calophyllum brasiliense</i> Cambess.	<p>브라질</p>	<p>Árbol de santa María, Calophylle du Brésil, Guanandi, Maria, Santa Maria</p>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자토바	<i>Hymenaea courbaril</i> L.	브라질 볼림 가이아나 중앙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 카리브 해 수리남 영국	Jatobá Gomme Animée, Pois Confiture Algarrobo, Algarrobo de la Antillas, Algarrobo das Antilhas, Azucar, Cuapinol, Curbaril, Guapinol, Huayo, Jatai, Jutaby Rode Lokus <i>Brazilian Cherry,</i> <i>Brazilian Copal,</i> <i>Cayenne Copal,</i> <i>Copal,</i> <i>Demarara Copal,</i> <i>Kerosene Tree,</i> <i>Stinking Toe,</i> <i>Latin American Locust,</i> <i>West Indian Locust</i>
제루통	<i>Dyera costulata</i> Hook. f. <i>Dyera polyphylla</i> (Miq.) Steenis (Syn. <i>Dyera lowii</i> Hook. f.)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Jelutong, Djelutong, Melabuwai Jelutong, Andjaroetoeng, Letoeng, Pantoeng, Jelutong Bukit, Jelutong Paya Red and/or White Jelutong
제퀴티바	<i>Cariniana legalis</i> O. Ktze (Syn. <i>Cariniana brasiliensis</i> Casar.) <i>Allantoma integrifolia</i> (Ducke) S.A.Mori (Syn. <i>Cariniana integrifolia</i> Ducke)	볼리비아 브라질	Yesquero Jequitiba, Jequitiba Branco, Jequitiba Rosa, Jequitiba Vermelho, Estopeiro
지토	<i>Guarea guidonia</i> (L.) Sleumer (Syn. <i>Guarea guara</i> (Jacq.) P. Wils. Syn. <i>Guarea trichilioides</i> L.)		
종콩	<i>Dactylocladus stenostachys</i> Oliv.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Mentibu, Sampinur Medang-Tabak, Jongkong, Medang, Merubong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조로리	<i>Swartzia jorori</i> Harms		
주라코	<i>Bucida buceras</i> L.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	Black Olive, Bois Gris-Gris, Bois Margot, Gregre, Júcaro, Oxhorn Bucida, Ucar
카복	<i>Irvingia malayana</i> Oliv. ex A. Benn.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Pau Kijang Kabok <i>Wild Almond</i>
카담	<i>Neolamarckia</i> spp. <i>Neolamarckia cadamba</i> (Roxb.) Bosser (Syn. <i>Anthocephalus</i> <i>cadamba</i> (Roxb.) Miq.) <i>Neolamarckia macrophylla</i> (Roxb.) Bosser (Syn. <i>Anthocephalus</i> <i>macrophyllus</i> (Kuntze) Havil.)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Jabon, Kelempajan Kelempayan Kelampo, Kelepayan, Ludai, Kelempayan Mau, Yemau, Maukadon, Mau-Lettan-She Kaatoan Bangkal
칸다 (칸다 브룬, 칸다 로즈)	<i>Beilschmiedia</i> spp. <i>Beilschmiedia congolana</i> Robyns & Wilczek <i>Beilschmiedia gaboonensis</i> Benth. & Hook. <i>Beilschmiedia</i> <i>hutchinsoniana</i> Robyns & Wilczek <i>Beilschmiedia letouzeyi</i> Robyns & Wilczek <i>Beilschmiedia mannii</i> Robyns & Wilczek <i>Beilschmiedia oblongifolia</i> Robyns & Wilczek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탄자니아	Kanda Bonzale Bitehi Nkonengu Mfimbo
카포키에	<i>Bombax buonopozense</i> P. Beauv. (Syn. <i>Bombax flammeum</i> Ulbr.)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카폴	<p><i>Dryobalanops</i> spp.</p> <p><i>Dryobalanops sumatrensis</i> (J.F.Gmel.) Kosterm. (Syn. <i>Dryobalanops aromatica</i> C.F. Gaertn.)</p> <p><i>Dryobalanops beccarii</i> Dyer</p> <p><i>Dryobalanops fusca</i> V. St.</p> <p><i>Dryobalanops lanceolata</i> Burck</p> <p><i>Dryobalanops oblongifolia</i> Dyer</p> <p><i>Dryobalanops rappa</i> Becc.</p>	<p>브루나이</p> <p>인도네시아</p> <p>말레이시아</p> <p>프랑스 영국</p>	<p>Kapur Bukit, Kapur Peringii, Kapur Anggi Kapur Singkel, Kapur Sintuk, Kapur Empedu, Kapur Tanduk, Kapur Kayatan, Petanang Kapur-Kejatan, Keladan, Swamp Kapur, Borneo Camphorwood-Paigie</p> <p>Capur Borneo Camphor, Borneo Camphorwood, Borneo Camphorwood-Paigie</p>
카리테	<p><i>Vitellaria paradoxa</i> C.F.Gaertn. (Syn. <i>Butyrospermum paradoxum</i> (C.F. Gaertn.) Hepper Syn. <i>Butyrospermum parkii</i> (G. Don) Kotschy)</p>	아프리카	<p>Shea Butter Tree, Shea Tree, Shi Tree</p>
카사이	<i>Pometia</i> spp.	<p>파푸아 뉴기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p> <p>프랑스 스페인 영국</p>	<p>Taun Sibu Malugai Truong</p> <p>Bois de Pieux Longán de Fiji Fiji Longan, Island Lychee</p>
카우다무	<i>Myristica castaneifolia</i> A. Gray	동남 아시아	Fiji Nutmeg
케돈동	<p><i>Canarium</i> spp.</p> <p><i>Dacryodes</i> spp.</p> <p><i>Santiria</i> spp.</p>	<p>인도</p> <p>인도네시아</p> <p>말레이시아</p> <p>필리핀</p> <p>태국 베트남</p>	<p>Dhuwhite, White Dhup Kenari, Kiharpan Kedondong, Upi Dulit, Pili Ma-Kerm Cham</p>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케카통	<i>Cynometra</i> spp.	피지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Moivi Belangkan, Kekotong Myinga Oringen Mang-kha
케켈레	<i>Holoptelea grandis</i> Mildbr.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Sayo Avep-Ele Gomboul Mbosso Kékélé Nemba-Mbobolo Onakwa Olazo Mumuli
켈라트	<i>Eugenia</i> spp.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국 베트남	Jaman Jaman, Jambu, Jamun, Meralu, Nir-Naval Black Kelat, Common Kelat, Kelat Tabye Water Gum Makasin Chomphu Plong, Tram
켈레당 (테랍)	<i>Artocarpus</i> spp.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Teureup Pudau, Terap Antipolo Ka-ok
캠방 세망콧	<i>Scaphium</i> spp.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Kembang semangkok, Selayar Thitlaung Samrong
캠파스	<i>Koompassia malaccensis</i> Maing. ex Benth.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태국	Menggeris, Toemaling Kempas, Mengris, Impas Kempas Yuan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케란지	<i>Dialium</i> sp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영국	Xoay, Kralanh Kerandji Taung-Kaye Kaki-Khao, Khleng, Yi-Thongbung Xoay <i>KerANJI</i> , <i>Kranji</i>
케리티 실버발리	<i>Ocotea puberula</i> (Rich.) Nees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수리남	Canela Guaica, Guaicá Canela-de-Corvo, Guaica, Canela-Parda, Canela-Pimenta, Canela Pinho, Canela-Sebo Moraja Kaspi Laurel Guaika, Guaika Keretiballi
케루잉	<i>Dipterocarpus</i> spp. <i>Dipterocarpus acutangulus</i> Vesque <i>Dipterocarpus appendiculatus</i> Scheff. <i>Dipterocarpus alatus</i> A. DC. <i>Dipterocarpus baudii</i> Korth. <i>Dipterocarpus gracilis</i> Blume (Syn. <i>Dipterocarpus pilosus</i> Roxb.) <i>Dipterocarpus cornutus</i> Dyer <i>Dipterocarpus costulatus</i> V. Sl. <i>Dipterocarpus kerrii</i> King <i>Dipterocarpus verrucosus</i> Foxw. ex Slooten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Chloeuteal, Dau, Khleng, Thbeng, Gurjun Keroeing, Nhang, Keruing Gaga, Keruing Bajak, Keruing Beras Yang, Kanyin Apitong Hora Yang Dau (Yaou), Tro
키아소스	<i>Pentadesma butyracea</i> Sabine <i>Pentadesma lebrunii</i> Staner		
키바코코	<i>Anthonotha fragrans</i> (Baker f.) Exell & Hillc. (Syn. <i>Macrolobium fragrans</i> Baker f.)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키켄지	<i>Ocotea usambarensis</i> Engl.		
코코	<i>Albizia lebbek</i> (L.) Benth.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태국 베트남 프랑스 스페인 영국	Sirish, Sirisha Aninapla, Langil Siris, Sirs Kitoke, Tarsi, Tekik Batai, Batai Batu, Kungkur, Oriang Kalo Siris Cha Kham, Chamchuri, Kampu, Phruok, Suek Lim Xanh <i>Bois noir,</i> <i>Bois savane,</i> <i>Tcha Tcha</i> <i>Acacia Chachá,</i> <i>Algarroba de Olor,</i> <i>Amor Plantónico,</i> <i>Aroma,</i> <i>Aroma Francesca,</i> <i>Cabellos de Ángel,</i> <i>Faurestina,</i> <i>Florestina,</i> <i>Lengua de Mujer,</i> <i>Lengua Viperina</i> <i>Acacia Amarilla,</i> <i>East Indian Walnut,</i> <i>English Woman's Tongue,</i> <i>Fry wood,</i> <i>Indian Siris,</i> <i>Lebbeck,</i> <i>Siris Tree,</i> <i>Woman's Tongue Tree</i>
콘드로티	<i>Rhodognaphalon brevicuspe</i> Roberty (Syn. <i>Bombax brevicuspe</i> Sprague) <i>Rhodognaphalon schumannianum</i> A. Robyns (Syn. <i>Bombax rhodognaphalon</i> K. Schum.) <i>Bombax chevalieri</i> Pellegr.	베닝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영국	Kpatin Dehun Ovong N'Demo Kondroti Alone, Ogumalanga Bombax Meguza, Mungusa Awori Mfume <i>East African Bombax</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코시포	<i>Entandrophragma candollei</i> Harms	앙골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Lifuco Atom-Assie Kosipo Penkwa-Akowaa Omu, Heavy Sapelle Impompo <i>Kosipo-Mahagoni</i> <i>Omu</i>
코티베	<i>Nesogordonia</i> spp. <i>Nesogordonia kabingaensis</i> var. <i>kabingaensis</i> (K.Schum.) Capuron (Syn. <i>Nesogordonia</i> <i>papaverifera</i> R. Capuron Syn. <i>Cistanthera papaverifera</i> A. Chev.)	앙골라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Kissinhungo Ovoe, Ovouï Naouya Kotibé Aborborá Danta Otutu Kondofindo <i>Danta</i>
코토	<i>Pterygota</i> spp. <i>Pterygota macrocarpa</i> K. Schum. <i>Pterygota bequaertii</i> De Wild.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Kakende Koto Ake Kyere, Awari Kefe, Poroposo Ikame <i>Anatolia</i> <i>African Pterygota</i> , <i>Pterygota</i>
쿨림	<i>Scorodocarpus borneensis</i> (Baillon) Becc.	말레이시아	Bawang Hutan
콤비	<i>Lannea welwitschii</i> (Hiern) Engl.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Baiséguma, Kakoro, Loloti Kumenini Ekika
콩쿨	<i>Albizia saman</i> (Jacq.) Merr.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쿠로카이	<i>Protium</i> spp.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Carano Almecega, Aruru, Breu Anime, Carano, Currucay Anime Blanco Encens Blanc, Gris Rouge Haiawa, Kurokay, Porokay Copal-Caspi Tinguimoni Anime, Carano, Azucarito
란다	<i>Erythroxylum mannii</i> Oliv.	카메룬 콩고 코트디보르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 리온	Landa Lukienzo Dabe Landa Nkanza Bimini
라티	<i>Amphimas</i> spp. <i>Amphimas pterocarpoides</i> Harms	카메룬 코트디보르 가나 콩고	Edjin Edzil Lati Edzui Muzui, Bokanga
인도 월계수(laurel)	<i>Terminalia tomentosa</i> (Roxb.) Wight & Arn.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Chhlik Snaeng Arjun, Jaha, Jelawai, Talisai, Telinsi, Kumbuk Suak Dam Taukyan, Thinsein Indian Laurel Hok Fa Chieu-Lieu
림바	<i>Terminalia superba</i> Engl. & Diels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보르 적도 기니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미국	Akom N'Ganga Limba Fraké Akom Ofram Afara, White Afara Kojagei Limba <i>Limbo,</i> <i>Fraké,</i> <i>Noyer du Mayombé</i> <i>Korina</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림발리	<i>Gilbertiodendron</i> spp. <i>Gilbertiodendron dewevrei</i> (De Wild.) J. Léon (Syn. <i>Macrolobium dewevrei</i> De Wild.) <i>Gilbertiodendron preussii</i> J. Léon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가나 라이베리아	Ekobem Molapa Epal Vaa Ditshipi, Ligudu Limballi Abeum Tetekon, Sehmeh
리모나발리	<i>Chrysophyllum pomiferum</i> (Eyma) T.D.Penn.		
로리온도	<i>Olea welwitschii</i> (Knobl.) Gilg. & G.Schellenb. (Syn. <i>Steganthus welwitschii</i> Knobl.)	영국	<i>Elgon olive</i>
롱히	<i>Chrysophyllum</i> spp. (Syn. <i>Gambeya</i> spp.) <i>Chrysophyllum africanum</i> G.Don, (Syn. <i>Gambeya africana</i> Pierre) <i>Chrysophyllum lacourtianum</i> De Wild.) (Syn. <i>Gambeya lacourtiana</i> Aubrev. & Pellegr.) <i>Chrysophyllum subnudum</i> Baker (Syn. <i>Gambeya subnuda</i> Pierre)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Abam Bopambu Longhi Akatio, Anandio, Aningueri Rouge M'bebame Akasa Ekpiro, Osan
로토파	<i>Sterculia rhinopetala</i> Schum.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N'Kanang Lotofa Wawabima Aye <i>Brown Sterculia</i>
로우로 베르멜료	<i>Ocotea rubra</i> Mez.	브라질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영국	Gamela, Louro Gamela, Louro Vermelho Grignon Franc Baaka, Determa, Red Louro, Wanu Teteroma <i>Determa</i>
루푸나	<i>Chorisia</i> spp.	남 아메리카	Árbol botella, Árbol de lana, Paina de seda, Painera, Palo Borracho, Palo Barrigudo, Palo Botella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루삼바	<i>Markhamia lutea</i> (Benth.) K. Schum. (Syn. <i>Markhamia platycalyx</i> Sprague)		
마사란-두바	<i>Manilkara</i> spp. <i>Manilkara bidentata</i> A Chev. (Syn. <i>Manilkara surinamensis</i> (Miq.) Dubard) <i>Manilkara huberi</i> (Ducke) Standl. Dubard	브라질 콜롬비아 볼링 가이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영국 미국	Maçaranduba, Maparajuba, Paraju Balata, Nispero Balata franc, Balata rouge, Balata gomme, Balata, Bulletwood, Beefwood Nispero Pamashto, Quinilla Colorada Bolletrie Balata Massarandu <i>Bulletwood</i> <i>Bulletwood</i> , <i>Beefwood</i>
마캉	<i>Mangifera</i> spp.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솔로몬 군도 태국 베트남 프랑스 영국	Mangga, Mango Membacang Asam, Machang, Sepam Mangowood, Thayet Mango Mango Ailai, Asai, Pahunan Ma-Muang-Pa Ma-Muang-Pa, Pamutan Xoai <i>Manguier</i> <i>Mangowood</i>
마키케	<i>Lonchocarpus lanceolatus</i> Benth.	중앙 아메리카	Black Cabbagebark, Chaprerno, Sindjaplé
마푸	<i>Clausena melioides</i> Hiern. <i>Fagaropsis angolensis</i> H.M.Gardn	탄자니아 케냐	Mfu, Mkunguni, Mtongoti Muyinja
마푸마티	<i>Newtonia buchananii</i> Gilb. & Bout (Syn. <i>Piptadenia buchananii</i> Bak.)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마호가니	<i>Swietenia macrophylla</i> King (Syn. <i>Swietenia candollei</i> Pitt. Syn. <i>Swietenia tessmannii</i> Harms. Syn. <i>Swietenia krukovii</i> Gleason) <i>Swietenia mahagoni</i> (L.) Jacq. <i>Swietenia humilis</i> Zucc.	볼리비아 브라질 중앙 아메리카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베네주엘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Caoba, Mara Aguano, Mogno Araputanga Caoba, Caoba del Sur, Caoba del Atlantica Caoba Caoba Mahogani Chacalte Mahogani Zopilote, Baywood Mahogani Aguano, Caoba Caoba, Orura <i>Acajou d'Amérique</i> <i>Mogano</i> <i>Mahonie</i> <i>Caoba</i> <i>Mahogany,</i> <i>Brazilian Mahogany</i> <i>Mahogany,</i> <i>Brazilian Mahogany</i>
말라강가이	<i>Eusideroxylon melagangai</i> (Symington) Kosterm.		
말라스	<i>Homalium</i> spp.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Dlingsem, Gia, Melmas, Momala Banisian, Padang, Selimbar, Takaliu, Aranga Myaukchaw, Myaukugo Khen Nang Kha Nang
만보데	<i>Detarium macrocarpum</i> Harms <i>Detarium senegalense</i> J.F. Gmel.	서 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	Dankh, Petit Détar, Sweet Dattock
만디오-퀘이라	<i>Qualea</i> spp.	브라질 볼링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주엘라	Mandio, Mandioqueira, Quaruba Gronfolo Gris Grignon Fou, Kouali Gronfoeloe Floreccillo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마닐	<i>Symphonia globulifera</i> L.f.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미국	Azufre, Bolivia Anani, Canadi, Mani Azufre, Machare Machare, Puenga, Zaputi Manil, Manil Marecage Manni Azufre, Brea-Caspi Mani, Mataki Mangue Mani, Paraman, Peramancillo <i>Boarwood</i>
마닐 몽타뉴	<i>Moronobea coccinea</i> Aubl.	브라질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Anani Da Terra Firme, Bacuri de Anta Manil Montagne, Manil Peou, Parcouri-Manil Coronobo, Morombo-Rai, Moronobo Manniballi, Matakkie
마루파	<i>Simarouba amara</i> Aubl.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영국	Chiriuana Marupa, Marupauba, Parahyba, Paraiba, Tamanquiera Simaruba Cedro Amargo, Cuna, Guitarro Simarouba Simarupa Marupa Soemaroeba Cedro Blanco, Simarouba <i>Bitterwood</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마타-마타	<i>Eschweilera</i> spp. <i>Eschweilera amara</i> Mart. ex O. Berg	브라질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Mata-Mata, Matamata Preto Baakalaka, Baikaaki, Balibon, Kouanda, Maho, Mahot Noir, Mahou Black Kakaralli, Kakaralli Hoogland Barklak, Manbarklak
마타 울라트	<i>Kokoona</i> spp.		
메크루쨌	<i>Androstachys johnsonii</i> Prain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Cimbirre Lebombo Ironwood, Nsimbitsi
메당	<i>Litsea</i> spp.	호주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Bollywood Medang Padang Ondon Bagaoring, Batikuling Boi loi Huru Chick Dong Kyese
멜루나크	<i>Pentace</i> spp.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Baru Baran, Melunak, Takalis Baru Baran Sisiat
멤페닝	<i>Lithocarpus</i> spp.		
멩쿠랑	<i>Heritiera</i> spp. (Syn. <i>Tarrietia</i> spp.) <i>Heritiera albiflora</i> (Ridl.) Kosterm. <i>Heritiera borneensis</i> (Merr.) Kosterm. <i>Heritiera simplicifolia</i> (Mast.) Kosterm. <i>Heritiera javanica</i> (Bl.) Kosterm. <i>Heritiera kuenstleri</i> (King) Kosterm. <i>Heritiera sumatrana</i> (Miq.) Kosterm. <i>Tarrietia perakensis</i> King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호주	Don-Chem Palapi, Teraling Mengkulang, Kembang Kanze Lumbayau Chumprag Huynh <i>Red or Brown Tulip Oak</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메란티, 라이트 레드	<i>Shorea</i> spp.	인도네시아	Red Meranti,
	<i>Shorea acuminata</i> Dyer		Meranti Merah-Muda,
	<i>Shorea dasyphylla</i> Foxw.	말레이시아	Meranti Bunga
	<i>Shorea hemsleyana</i> (King) King ex Foxw.		Damar Siput,
	<i>Shorea macrantha</i> Brandis		Meranti-Hantu,
	<i>Shorea johorensis</i> Foxw.		Meranti Kepong,
	<i>Shorea lepidota</i> (Korth.) Bl.		Meranti Langgang,
	<i>Shorea leprosula</i> Miq.		Meranti Melanthy,
	<i>Shorea macroptera</i> Dyer		Meranti Paya,
	<i>Shorea sandakanensis</i> Sym.		Meranti Rambai,
	<i>Shorea ovalis</i> (Korth.) Bl.	필리핀	Meranti Tembaga,
	<i>Shorea parvifolia</i> Dyer	태국	Meranti Tengawang,
	<i>Shorea palembanica</i> Miq.		Meranti Sengkawang,
	<i>Shorea platycarpa</i> Heim.		Engkawang,
	<i>Shorea teysmanniana</i> Dyer ex Brandis		Seraya Batu,
	<i>Shorea revoluta</i> Ashton		Seraya Punai
	<i>Shorea argentifolia</i> Sym.		Seraya Bunga,
	<i>Shorea leptocladus</i> Sym.		Kawang
	<i>Shorea smithiana</i> Sym.		Almon,
	<i>Shorea albida</i> Sym.		Light Red Luan
<i>Shorea macrophylla</i> (de Vriese) Ashton		Saya Khao,	
<i>Shorea quadrinervis</i> Slooten.		Saya Lueang,	
<i>Shorea gysbertsiana</i> Burck		Chan Hoi	
<i>Shorea pachyphylla</i> Ridl. ex Sym.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메란티, 화이트	<i>Shorea</i> spp.	캄보디아	Lumber, Koki Phnom
	<i>Shorea agami</i> Ashton	인도네시아	Meranti Putih, Damar Puthi
	<i>Shorea assamica</i> Dyer	말레이시아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i>Shorea bracteolata</i> Dyer		
	<i>Shorea dealbata</i> Foxw.		
	<i>Shorea henryana</i> Lanessan		
	<i>Shorea lamellata</i> Foxw.	미얀마 필리핀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i>Shorea resinosa</i> Foxw.	태국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i>Shorea roxburghii</i> G. Don		
	<i>Shorea stalura</i> Roxb.	베트남	
	<i>Shorea hypochra</i> Hance		
	<i>Shorea hentonyensis</i> Foxw.		
	<i>Shorea sericeiflora</i> C.E.C. Fischer & Hutch.		
	<i>Shorea farinosa</i> C.E.C. Fischer		
	<i>Shorea gratissima</i> Dyer		
	<i>Shorea ochracea</i> Sym.		
<i>Parashorea malaanonan</i> (Blco.) Merr.			
<i>Shorea polita</i> S. Vidal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메란티, 옐로우	<i>Shorea</i> spp. <i>Shorea fauetiana</i> Heim. <i>Shorea dolichocarpa</i> Slooten. <i>Shorea maxima</i> (King) Sym. <i>Shorea longisperma</i> Roxb. <i>Shorea gibbosa</i> Brandis <i>Shorea multiflora</i> (Burck) Sym. <i>Shorea hopeifolia</i> (Heim.) Sym. <i>Shorea resina-nigra</i> Foxw. <i>Shorea peltata</i> Sym. <i>Shorea acuminatissima</i> Sym. <i>Shorea blumutensis</i> Foxw. <i>Shorea fauetioides</i> Ashto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Seraya Kuning,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메란티바카우	<i>Shorea rugosa</i> F. Heim <i>Shorea uliginosa</i> Foxw.		
메라완	<i>Hopea</i> spp. <i>Hopea apiculata</i> Sym. <i>Hopea griffithii</i> Kurz <i>Hopea lowii</i> Dyer <i>Hopea mengarawan</i> Miq. <i>Hopea nervosa</i> King <i>Hopea odorata</i> Roxb. <i>Hopea papuana</i> Diels <i>Hopea sangal</i> Korth. <i>Hopea sulcata</i> Sym.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국 베트남	Koki Merawan/Sengal Merawan/Sengal Gagil Selangan, Selangan-Kasha Thingan Light Hopea Manggachapui Takhian Sao, Sau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멜바우	<i>Intsia palembanica</i> Miq. (Syn. <i>Intsia bakeri</i> Prain.) <i>Intsia palembanica</i> (Miq.) <i>Intsia bijuga</i> (Colebr.) Kuntze (Syn. <i>Intsia retusa</i> (Kurz.) O.Kuntze.)	피지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뉴 칼레도니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영국	Vesi Merbau Hintsy Merbau Komu Kwila Ipil, Ipil Laut Lum-Paw, Gonuo <i>Kwila</i> <i>Kalabau</i> <i>Moluccan Ironwood</i>
멜포	<i>Swintonia</i> spp. <i>Swintonia floribunda</i> Griff. <i>Swintonia schwenkii</i> Teijsm. & Binn. ex Hook. f. <i>Swintonia penangiana</i> King <i>Swintonia pierrei</i> Hance <i>Swintonia spicifera</i> Hook. f.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	Muom Thayet-Kin Merpau Merpauh Taung Thayet Civit Taungthayet Civit Muom
멜사와	<i>Anisoptera</i> spp. <i>Anisoptera curtisii</i> King <i>Anisoptera costata</i> Korth. (Syn. <i>Anisoptera oblonga</i> Dyer) <i>Anisoptera laevis</i> Ridl. <i>Anisoptera marginata</i> Korth. <i>Anisoptera thurifera</i> Blume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국 프랑스 영국 미국	Phdiek Mersawa Mai Bak Mersawa, Pengiran Kaunghmu Mersawa Palosapis Krabak, Pik <i>Ven-Ven</i> <i>Krabak</i> <i>Bella Rosa</i>
메싸싸	<i>Brachystegia spiciformis</i> Benth.		
메톤도	<i>Cordyla africana</i> Lour.	탄자니아	Mroma, Mpachamu, Mgwata
미린디바-도체	<i>Glycydendron amazonicum</i> Ducke	브라질	Mirindiba-Doce, Pau-de-Casca-Doce
므좁보	<i>Brachystegia boehmii</i> Taub.	아프리카	Miombo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모아비	<i>Baillonella toxisperma</i> Pierre (Syn. <i>Mimusops djave</i> Engl.)	카메룬 콩고 적도 기니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Adjap, Ayap Dimpampi Ayap M'Foi Muamba jaune <i>African Pearwood</i>
노란색 모암베	<i>Enantia</i> spp. <i>Enantia chlorantha</i> Oliv.	영국	<i>African whitewood</i>
몰라베	<i>Vitex parviflora</i> Juss.	인도네시아 필리핀	Fuli Kaa, Kayu Kula Amugauan, Molave, Sagat
모모퀴	<i>Caesalpinia pluviosa</i> DC.	남 아메리카	False Brazilwood, Sibipiruna
몽헌자	<i>Manilkara mabokeensis</i> Aubr. <i>Manilkara obovata</i> J.H. Hemsley <i>Manilkara sylvestris</i> Aubt. & Pellegr.		
모파니	<i>Colophospermum mopane</i> (J. Kirk ex Benth.) J. Léonard. (Syn. <i>Copaifera mopane</i> Kirk & Benth.)		
모페	<i>Spondias mombin</i> L.	남 아메리카	Coolie Plum Gully Plum, Hog Plum, Jobo, Mopé, Prunier Mombin, Spanish Plum
모라	<i>Mora</i> spp.	남 아메리카	Alcornoque, Morabukea, Nato, Nato Rojo, Pracuba Branca, Pracuuba
모랄	<i>Maclura tinctoria</i> (L.) D. Don ex Steud. (Syn. <i>Chlorophora tinctoria</i> (L) Gaudich.)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Tatayiva-Saiyu Amarillo Amarello, Taiuva Dinde, Palo Amarillo Palo de Mora Barossa, Moral Bois d'Orange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모로토토	<i>Schefflera morototoni</i> (Aubl.) Maguire, Steyerl. & Frodin (Syn. <i>Didymopanax morototoni</i> (Aubl.) Decne. & Planch)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수리남 베네주엘라	Ambayguazu Mandioqueira Yarumero Yagrumo Macho Yagrumo Macho Chancaro Blanco Yagrumo Macho Kasavehout, Morototo Tinajero
모빙기	<i>Distemonanthus benthamianus</i> Baill.	베냉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Ayan Eyen Barre Eyen Eyen, Movingui Ayan Ayan, Ayanran <i>Ayan,</i> <i>Distemonanthus</i>
므탐바라	<i>Cephalosphaera usambarensis</i> Warb.		
므탄다루시	<i>Trachylobium verrucosum</i> Oliv.	영국	<i>East African copal</i>
무바라	<i>Pentaclethra macrophylla</i> Benth.		
무에리	<i>Prunus africana</i> (Hook.f.) Kalk. (Syn. <i>Pygeum africanum</i> Hook.f.)	영국	<i>Red Stinkwood</i> <i>Bitter almond</i>
무가이타	<i>Rapanea rhododendroides</i> Mez.		
무공하	<i>Adina microcephala</i> Hiern.	아프리카	Matumi Rhodesian Redwood
무힘비	<i>Cynometra alexandri</i> C.H. Wright	아프리카	Angu Baira Bapa Bosengere Kahimbi Kampiniungu Lukuanga Mbombele Mubale Mubangu Mubindi Mudindi Muhindi Mupombe Tembwe Uganda Ironwood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뫼히히	<i>Brachylaena huillensis</i> O.Hoffm. (Syn. <i>Brachylaena hutchinsii</i> Hutch.)	콩고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영국	Mkalambaki, Mkarambati, Muhugu, Muhuhu, Mvumo Mkalambaki, Mkarambati, Muhugu, Muhuhu, Mvumo Laeveldvaalbos Mkalambaki, Mkarambati, Muhugu, Muhuhu, Mvumo Mkalambaki, Mkarambati, Muhugu, Muhuhu, Mvumo <i>Low Veld Brachyleana,</i> <i>Low Veld Silver Oak,</i> <i>Silver Oak</i>
무이라-피랑가	<i>Brosimum rubescens</i> Taub.	브라질 볼링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Amapa Rana, Conduru, Falso Pao Brasil, Muirapiranga, Pau Rainha Satine, Satine Rouge, Satine Rubaine, Siton Paya Satinwood Doekaliballi, Satijnhout <i>Legno Satino,</i> <i>Ferolia</i> <i>Palo de Oro</i> <i>Bloodwood</i>
무이라팅가	<i>Maquira coriacea</i> (H.Karst.) C.C.Berg	브라질	Capinuri, Muiratinga
무카라티	<i>Burkea africana</i> Hook.		
무쿠롱구	<i>Autranella congolensis</i> A. Chev. (Syn. <i>Mimusops congolensis</i> De Wild.)	앙골라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나이지리아	Kungulu Elang, Elanzok Bouanga Mfua Mukulungu Akola Uku
무닝가	<i>Pterocarpus angolensis</i> DC.		
무니리단	<i>Siparuna</i> spp.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무샤라기	<i>Olea hochstetteri</i> Baker	영국	East African olive
무신	<i>Croton megalocarpus</i> Hutch.		
무씨비 (무텐예)	<i>Guibourtia coleosperma</i> J. Léon (Syn. <i>Copaifera coleosperma</i> Benth.) <i>Guibourtia arnoldiana</i> J. Léon	짐바브웨 영국	<i>Muzaule</i> <i>African Rosewood,</i> <i>Copalier,</i> <i>False Mopane,</i> <i>Mushibi,</i> <i>Musibi,</i> <i>Mussive,</i> <i>Muzaule,</i> <i>Muxibe,</i> <i>Rhodesian copalwood</i>
무타코	<i>Entandrophragma spicatum</i> (C.DC.) Sprague (Syn. <i>Entandrophragma ekebergioides</i> (Harms) Sprague Syn. <i>Wulffhorstia ekebergioides</i> Harms)		
무톤도	<i>Funtumia africana</i> (Benth.) Stapf <i>Funtumia elastica</i> (P.Preuss) Stapf <i>Funtumia latifolia</i> (Stapf) Stapf		
무지가	<i>Warburgia ugandensis</i> Sprague		
느테네	<i>Copaifera religiosa</i> J. Léon.	아프리카	Anzem, Bengi
나가	<i>Brachystegia cynometroides</i> Harms <i>Brachystegia eurycoma</i> Harms. <i>Brachystegia leonensis</i> Hutch. & Davy <i>Brachystegia nigerica</i> Hoyle & A.P.D. Jones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봉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영국	Ekop-Naga Meblo Mendou Tebako Okwen Bogdei <i>Okwen</i>
나르구스타	<i>Terminalia amazonia</i> (J.F.Gmel.) Exell. <i>Terminalia guyanensis</i> Eichler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Pau-Mulato Brancho Guayabo Leon Almendro Canshan Amarillo Carabazuelo Pardillo Negro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느강가	<i>Cynometra</i> spp. <i>Cynometra hankei</i> Harms		
니양곤	<i>Tarrietia utilis</i> (Sprague) Sprague (Syn. <i>Heritiera utilis</i> (Sprague) Sprague) <i>Tarrietia densiflora</i> Aubr. & Normand (Syn. <i>Heritiera densiflora</i> (Pellegr.) Kosterm.	코트디보르 가봉 가나 라이베리아 시에라 리온	Niangon Ogoue Nyankom Whismore Yami
네우크	<i>Fillaeopsis discophora</i> Harms		
니오베	<i>Staudtia gabonensis</i> Warb. <i>Staudtia kamerunensis</i> Warb. <i>Staudtia stipitata</i> Warb.	앙골라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Menga-Menga M'Bonda, Menga-Menga Molanga Bokapi M'Boun, Niove Kamashi, Susumenga
니아토	<i>Palaquium</i> spp. <i>Palaquium gutta</i> (Hook.) Burck (Syn. <i>Palaquium acuminatum</i> Burck) <i>Palaquium hexandrum</i> (Griff.) Baill. <i>Palaquium maingayi</i> Engl. <i>Palaquium rostratum</i> (Miq.) Burck <i>Palaquium xanthochymum</i> Pierre ex Burck <i>Payena</i> spp. <i>Payena maingayi</i> C.B. Clarke <i>Madhuca motleyana</i> (de Vriese) J.F. Macbr. (Syn. <i>Ganua motleyana</i> (de Vriese) Pierre ex Dubard)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영국	Pali Nyatoh Nyatoh, Mayang Taban, Riam Pencil Cedar Nato Kha-Nunnok Chay <i>Balam</i> <i>Padang</i>
오베로	<i>Picalima nitida</i> (Stapf) T. Durand (Syn. <i>Picalima klaineana</i> Pierre)		
오드지코우나	<i>Scytopetalum</i> spp.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오칸	<i>Cylicodiscus gabunensis</i> Harms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Adoum, African Greenheart, Bokoka N'Duma Bouemon Edoum, Oduma Adadua, Benya, Denya Okan
오쿠에	<i>Baphia nitida</i> Lodd. <i>Baphia pubescens</i> Hook.f.		
오꾸메	<i>Aucoumea klaineana</i> Pierre	콩고 적도 기니 가봉 영국	N'Kumi Okumé, N'Goumi, Okoumé, Angouma <i>Gaboon</i>
올롱	<i>Fagara heitzii</i> Aubrev. & Pellegr.	카메룬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Bongo M'Banza Kamasumu Olong Olon
올롱보고	<i>Zanthoxylum gillettii</i> (De Wild.) P.G.Waterman (Syn. <i>Fagara inaequalis</i> Engl. Syn. <i>Fagara macrophylla</i> Engl. Syn. <i>Fagara tessmannii</i> Engl.)		
온자빌리	<i>Antrocaryon micraster</i> A. Chev. & Guill. <i>Antrocaryon klaineianum</i> Pierre <i>Antrocaryon nannanii</i> De Wild.	앙골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포르투갈	N'Gongo Angonga Akoua Anguekong Onzabili Aprokuma Mugongo <i>Mongongo</i>
오레이	<i>Camptosperma panamense</i> Standl. <i>Camptosperma gummifera</i> (L). March.		
오상가	<i>Pteleopsis hylodendron</i> Mildbr.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Sikon Koframire Osanga
오씨미알	<i>Newtonia leucocarpa</i> Gilb. & Bout. (Syn. <i>Piptadenia leucocarpa</i> Harms)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오쏘코	<i>Scyphocephalium ochocoa</i> Warb. <i>Scyphocephalium mannii</i> Warb.	가봉	Ossoko, Sogho
오벵콜	<i>Guibourtia ehie</i> (A.Chev.) J. Léonard	코트디와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미국	Amazakoue Palissandro Ovengkol Hyeduanini, Anokye <i>Mozambique</i>
오보가	<i>Poga oleosa</i> Pierre	카메룬 가봉 나이지리아	Ngale Afo, Ovoga Inoi
오지코	<i>Dacryodes buettneri</i> (Engl.) H.J. Lam. (Syn. <i>Pachylobus buettneri</i> Engl.)	적도 기니 가봉 독일	Assia Ozigo, Assia <i>Assia</i>
오조우가	<i>Sacoglottis gabonensis</i> Urb.	카메룬 콩고 코트디와르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 리온	Bedwa, Bidou, Bodoua, Edoue, Eloue Niuka Akouapo, Tougbi Essoua, Ozouga Ozouga, Atala, Tala, Ugu Kpowuli
파코	<i>Ptaeroxylon obliquum</i> Radlk.		
파다우크 암보이나	<i>Pterocarpus indicus</i> Willd. (Syn. <i>Pterocarpus vidalianus</i> Rolfe)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i>Andaman-Padauk</i> Sena, Sonokembang Linggua Angsana Amboina Sena Pashu-Padauk Png-Rosewood Manila-Padouk, Narra Vitali <i>Amboine/Amboyna or</i> <i>Padouk</i> <i>Amboine/Amboyna or</i> <i>Padouk</i> <i>Amboyna or Padouk</i> Karin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아프리카 파도우크	<i>Pterocarpus osun</i> Craib. <i>Pterocarpus soyauxii</i> Taub. <i>Pterocarpus tinctorius</i> Welw.	앙골라 카메룬 콩고 적도 기니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Tacula Mbel Kisese Palo rojo Mbel Osun Padouk Mongola, Mukula, N'Gula <i>Padauk</i> <i>Corail</i> <i>Paduk</i> <i>Padoek</i> <i>African Padauk,</i> <i>Barwood,</i> <i>Camwood,</i> <i>Padauk</i>
팔다오	<i>Dracontomelon dao</i> (Blanco) Merr. & Rolfe <i>Dracontomelon edule</i> Skeels. <i>Dracontomelon sylvestre</i> Bl.	말레이시아 필리핀	Sengkulang Dao, Ulandug, Lamio
아시아 자단(紫檀)	<i>Dalbergia bariensis</i> Pierre <i>Dalbergia cambodiana</i> Pierre <i>Dalbergia cochinchinensis</i> Pierre <i>Dalbergia latifolia</i> Roxb. <i>Dalbergia oliveri</i> Prain <i>Dalbergia sissoo</i> Roxb.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East Indian Palisander East Indian rosewood Neang Nuon Palissandre d'Asie Tamalan
과테말라 자단(紫檀)	<i>Dalbergia tucurensis</i> Donn. Sm.		
마다가스카르 자단(紫檀)	<i>Dalbergia</i> spp. <i>Dalbergia louveli</i> R.Vig. <i>Dalbergia monticola</i> Bosser & R. Rabev. <i>Dalbergia normandii</i> Bosser & R. Rabev. <i>Dalbergia purpurascens</i> Baill. <i>Dalbergia xerophila</i> Bosser & R. Rabev.	프랑스 영국	<i>Bois de rose de</i> <i>Madagascar</i> <i>Madagascar rosewood</i>
로즈(rose) 자단(紫檀)	<i>Dalbergia decipularis</i> Rizz. & Matt.	브라질 불령 가이아나	Pau Rosa Bois de rose femelle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산토스 자단((紫檀)	<i>Machaerium scleroxylon</i> Tul.	브라질 볼리비아 볼령 가이아나	Caviuna, Jacarand, Pau Ferro Morado Palissandre de Santos
온두라스 자단((紫檀)	<i>Dalbergia stevensonii</i> Standl.		
파나마 자단((紫檀)	<i>Dalbergia darienensis</i> Rudd.		
파라 자단((紫檀)	<i>Dalbergia spruceana</i> Benth.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	Caviuna We-We Jacaranda Palissandre Rio Palissander Palisandro Brazilian Rosewood Jacaranda Pardo Brazilian Rosewood Shitan
리오 자단((紫檀)	<i>Dalbergia nigra</i> (Vell.) Allem. ex Benth.		
파나코코	<i>Swartzia leiocalycina</i> Benth.	브라질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독일 영국	Carrapatinho, Coração de Negro, Gombeira Bois Perdrix, Ferreol, Panacoco Agui, Banya, Wamara Gandoe, Ijzerhart, Zwart Parelhout <i>Wamara</i> <i>Ironwood</i> , <i>Wamara</i>
파오 로사	<i>Bobgunnia fistuloides</i> (Harms) J.H. Kirkbr. & Wiersema (Syn. <i>Swartzia fistuloides</i> Harms) <i>Bobgunnia madagascariensis</i> (Desv.) J.H. Kirkbr. & Wiers. (Syn. <i>Swartzia</i> <i>madagascariensis</i> Desv.)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Nom Nsas Kisasambra Boto N'Guesa Nsakala Oken Pau Ferro Udoghogho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파라파라	<i>Jacaranda copaia</i> Aubl.	브라질 콜롬비아 볼령 가이아나 파나마 수리남 베네주엘라	Carnauba da Matta, Para-Para Chingale Copaia, Faux Simarouba Gualandai Goebaja Abey, Cupay
파르코우리	<i>Platonia insignis</i> Mart.	브라질 에쿠아도르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Bacuri, Bacuri-Açu, Bacuriuba Matazama Parcouri Pakuri Goelhart, Pakoeli
파쉬아코	<i>Parkia velutina</i> Benoist		
파우 아마렐로	<i>Euxylophora paraensis</i> Huber		
파우 마르뎀 (페로바 로사)	<i>Aspidosperma</i> spp.	벨리제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볼령 가이아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My Lady Gavetillo Araracanga, Araruba, Jacamin Copachi Quillo Caspi Kiantioutiou, Koumanti Oudou Chichica Shibadan Chaperna, Chapel Volador Alcarreto Pumaquiro Kormanti kopi Nielillo Negro
파우 몰라토	<i>Calycophyllum spruceanum</i> (Benth.) K. Schum.	에쿠아도르	Capirona
파우 로사파우	<i>Rhamnus zeyheri</i> Sond.	영국	<i>Pink Ivory</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파우 록소	<i>Peltogyne maranhensis</i> Ducke	브라질 콜롬비아 가이아나 멕시코 수리남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Jatobazinho, Guarabu, Roxinho Tananeo Koroborelli, Merawayana, Saka Palo de Rosa, Pau Morado Dastan, Kocolorelli, Malako <i>Bois Pourpre</i> <i>Bois Violet</i> <i>Purpurheart</i> <i>Amarant,</i> <i>Purpleheart,</i> <i>Violetwood</i> <i>Amarant,</i> <i>Purpleheart,</i> <i>Violetwood</i>
페낭가	<i>Mesua ferrea</i> L.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Agacuram, Atha, Mallaynangai, Naga Sampige, Nagappu, Nangil, Nangu, Nangul, Suruli Churuli, Nagacampakam, Nagapoovu, Nanku, Vayanavu <i>Iron wood tree</i>
페르남보우크	<i>Caesalpinia echinata</i> Lam.	브라질	Brasileto, Ibirapitanga, Orabutá, Pernambuco, Pau Brasil, Pau Rosado
페루 후추나무	<i>Schinus molle</i> L.	남 아메리카 프랑스 영국	Arveira Pimienta Pirul <i>Poivre Rosé</i> <i>California Pepper Tree,</i> <i>Chilean Pepper Tree,</i> <i>Mastic Tree,</i> <i>Molle,</i> <i>Pepper Berry Tree,</i> <i>Pepper Tree,</i> <i>Peruvian Mastic,</i> <i>Peruvian Pepper Tree,</i> <i>Pink Pepper,</i> <i>Weeping Pepper</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필라(pillar)우드	<i>Cassipourea</i> spp. <i>Cassipourea malosana</i> (Baker) Alston (Syn. <i>Cassipourea elliotii</i> (Engl.) Alston)		
필론	<i>Hieronyma</i> spp.	벨리제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Suradanni Acurana, Sangue De Boi, Urucurana Mascarey Mascaré Rosita Nanciton Trompillo
피쿠이아	<i>Caryocar</i> spp. <i>Caryocar costaricense</i> Donn. Sm.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수리남	Piquia Almendrillo, Almendron, Cagui Aji, Ajillo Pekia Sawarie
플라타노	<i>Pouteria</i> spp.		
폼베이라	<i>Citharexylum fruticosum</i> L.	동남 아시아	Fiddlewood
프리마베라	<i>Tabebuia donnell-smithii</i> Rose	영국	Gold Tree
푸나	<i>Tetramerista glabra</i> Miq.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Punal, Bang Kalis, Paya Punam, Ponga, Peda, Entuyut, Amat, Tuyut
핀카도	<i>Xylia</i> spp.		
쿠아루바	<i>Vochysia</i> spp. <i>Vochysia guatemalensis</i> Don. Sm. <i>Vochysia schomburgkii</i> Warm.	가이아나	Iteballi, San Juan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라민	<i>Gonystylus bancanus</i> (Miq.) Kurz <i>Gonystylus macrophyllus</i> (Miq.) Airy Shaw (Syn. <i>Gonystylus philippinensis</i> Elm.) <i>Gonystylus reticulatus</i> (Elm.) Merr.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솔로몬 군도 스위스	Garu-Buaja, Akenia, Medang Keram Melawis, Ramin Batu, Ramin Telur, Ahmin Lantunan-Bagio Ainunura, Latareko, Petata, Fungunigalo <i>Akenia</i>
랭가스	<i>Gluta</i> spp.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Jalang, Kerbau, Rengas Thayet-Thitsi Rengas, Tembaga Rakban
레사크	<i>Vatica</i> spp.		
리키오	<i>Uapaca</i> spp. <i>Uapaca guineensis</i> Müll. Arg.	카메룬 코트디보아르 나이지리아	Borikio, Rikio, Rikio Riviere Borikio, Rikio, Rikio Riviere Abo Emido, Yeye
로사와	<i>Gmelina vitiensis</i> (Seem) A.C. Sm.		
산(山) 로즈	<i>Brownea</i> spp.		
사비쿠	<i>Lysiloma latisiliquum</i> (L.) Benth.	중앙 아메리카	False Tamarind, Tsalam, Tzalam
사보아라나	<i>Swartzia benthamiana</i> Miq.	가이아나	Guyana Rosewood, Wamara
사푸칼라	<i>Dacryodes pubescens</i> H.J. Lam (Syn. <i>Pachylobus pubescens</i> Engl.)		
살	<i>Shorea obtusa</i> Wall. <i>Shorea robusta</i> C.F. Gaertn.	동남 아시아	Rang
살리	<i>Tetragastris</i> spp.	브라질 콜롬비아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니카라과 푸에르토리코	Almesca Aguarras, Palo de Cerdo Encens rouge, Gommier Haiawaballi Kerosen Masa, Palo de aceite
단향목(檀香木)	<i>Santalum album</i> L.	동남 아시아	Indian Sandalwood, Santal Blanc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사펠리	<i>Entandrophragma cylindricum</i> Sprague	앙골라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Undianuno Assié-Sapelli M'Boyo Undianuno Aboudikro Penkwa Sapele Muyovu Lifaki <i>Sapelli-Mahagoni</i> <i>Sapele</i>
사푸카이아	<i>Eschweilera grandiflora</i> (Aubl.) Sandwith (Syn. <i>Lecythis grandiflora</i> Aubl.) <i>Lecythis pisonis</i> Cambess.	남 아메리카	Sapucaia Sapukaina
사퀴-사퀴	<i>Bombacopsis quinata</i> (Jacq.) Dugand	중앙 아메리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Cedro Espino, Cedro Espinoso, Cedro Tolua, Pochote Cedro Tolua, Ceiba Tolua, Cedro Macho Saqui Saqui, Cedro Dulce, Murea
사틴 실란	<i>Chloroxylon swietenia</i> DC.	아시아	Buruta, Ceylon Satinwood, East Indian Satinwood
세퍼티르	<i>Sindora</i> spp. <i>Sindora affinis</i> De Wit <i>Sindora coriacea</i> (Baker) Prain <i>Sindora echinocalyx</i> Prain <i>Sindora siamensis</i> Teijsm. ex Miq. <i>Sindora velutina</i> Baker (Syn. <i>Sindora parvifolia</i> Backer) <i>Pseudosindora palustris</i> Sym. (Syn. <i>Copaifera palustris</i> (Sym.) De Wit)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Krakas Sindur Sepetir, Meketil, Saputi, Sepeteh, Petir, Petir-Sepetir Pay or Swamp-Sepetir, Sepetir Nin-Yaki Supa Krathon, Maka-Tea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세라야, 화이트 (화이트라왕)	<i>Parashorea malaanonan</i> Merr. <i>Parashorea plicata</i> Brandis <i>Parashorea macrophylla</i> Wyatt-Smith ex Ashton <i>Parashorea tomentella</i> Sym. Meijer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Pendan, Urat Mata, Belutu, White Seraya Urat Mata Thingadu Bagtikan, White Lauan Cho-Chi
세센도크	<i>Endospermum</i> spp.	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Kauvula Bakota, Sendok-Sendok Ekor, Sendok-Sendok, Terbulan Gubas Basswood, Endospermum
심포	<i>Dillenia</i> spp. <i>Dillenia aurea</i> Sm. <i>Dillenia eximia</i> Miq.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Sempur, Simpur Simpur Mai-Masan, Zinbyum Katmon, Masan San,
시포	<i>Entandrophragma utile</i> Sprague	앙골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Kalungi Asseng-Assié Sipo Abebay Assi Utile Utile Mufumbi Liboyo <i>Sipo-Mahagoni</i> <i>Utile</i>
인도 뱀(蛇)나무	<i>Loxopterygium sagotii</i> Hook f.	수리남	Hububalli
소부	<i>Cleistopholis patens</i> Engl. & Diels. <i>Cleistopholis glauca</i> Pierre ex Engl.& Diels.		
소우구에	<i>Parinari excelsa</i> A.Chev, ssp. <i>holsti</i> Engl. (Syn. <i>Parinari tenuifolia</i> A. Chev.)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Kpar Esagko, Inyi Mampata Mubura Mubura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수쿠피라	<i>Bowdichia nitida</i> Benth. <i>Diploptropis martiusii</i> Benth. <i>Diploptropis purpurea</i> (Rich.) Amsh.	브라질 콜롬비아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Sucupira, Sapurira Arenillo, Zapan Negro Coeur dehors, Baaka Tatabu Chontaquiro, Huasai-Caspi Zwarte Kabbes Congrio, Alcornoque
수마우마	<i>Ceiba pentandra</i> (L.) Gaertn. <i>Ceiba samauma</i> (Mart. & Zucc.) K.Schum.	볼리비아 브라질 중앙 아메리카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Ceiba, Mapajo Toborochi, Sumauma Paneira Ceiba, Ceibon, Inup, Piton, Panya Ceiba, Bonga Ceiba Uchuputu, Guambush Mahot coton, Fromager, Bois coton Kumaka, Silk Cotton Ceiba, Huimba Kankantrie, Koemaka Ceiba Yucca, Ceiba
수켄	<i>Toona sureni</i> (Bl.) Merr. (Syn. <i>Toona febrifuga</i> Roem.) <i>Toona ciliata</i> M. Roem. (Syn. <i>Cedrela toona</i> (Roxb. ex Rottler) <i>Toona calantas</i> Merr. & Rolfe <i>Toona australis</i> (F. Muell.) Harms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국 베트남 호주 영국 미국	Chomcha Toon Surian, Limpagna Surea-Bawang Thitkado Red Cedar Calantas, Toon, Yomham Xoan-Moc <i>Red Cedar,</i> <i>Moulmein Cedar,</i> <i>Burma Cedar</i> <i>Moulmein Cedar,</i> <i>Burma Cedar</i>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수야	<i>Pouteria speciosa</i> (Ducke) Baehni	브라질 가이아나	Pajura, Pajura de Obidos Chuya, Durban Pine, Por, Suya
탈리	<i>Erythrophleum</i> spp. <i>Erythrophleum suaveolens</i> Brenan (Syn. <i>Erythrophleum guineense</i> G. Don.) <i>Erythrophleum ivorense</i> A. Chev.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볼링 가이아나 가봉 가나 기네비소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래아 리온 탄자니아 잠비아 영국	Elone N'Kassa Alui, Tali Eloun Elondo Eloun Potrodom Mancone Missanda Sasswood Tali Gogbei Mwavi Muave <i>Missandra</i>
탐보티	<i>Spirostachys africana</i> Sond.		
타니	<i>Cryptosepalum staudtii</i> Harms		
타딤부카	<i>Buchenavia</i> spp.		
타피아	<i>Alchornea triplinervia</i> (Spreng.) Müll.Arg.	브라질	Kanakudiballi
타수아	<i>Aglaia</i> spp. (Syn. <i>Amoora</i> spp.)		
타타주바	<i>Bagassa guianensis</i> Aubl.	브라질 볼링 가이아나 수리남	Amapa-Rana, Tatajuba Bagasse Jaune Gele Bagasse
타우아리	<i>Couratari</i> spp.	브라질 가이아나 볼링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주엘라	Imbirena Wadara Couatari, Inguipipa, Maho Cigare, Tabari Ingipipa Capa de Tabaco, Tampipio
트치톨라	<i>Oxystigma oxyphyllum</i> (Harms J. Léon.) (Syn. <i>Pterygopodium oxyphyllum</i> Harms)	앙골라 카메룬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나이지리아	Tola Chinfuta Nom Sinedon Kitola, Tchitola Akwakwa, Tshibudimbu Emola, M'Babou Lolagbola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티크	<i>Tectona grandis</i> L.f.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프랑스 독일	Sagwan Jati, Tek May Sak Kyun May Sak Giati, Teck Teck Burma-Rangoon-Java Teak
템부수	<i>Fagraea fragrans</i> Roxb.	캄보디아	Tatro, Trai
		피지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Buabua Temasuk Anan, Ananma Urung
텐토	<i>Ormosia</i> spp. <i>Ormosia coutinhoi</i> Ducke	브라질 콜롬비아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푸레르토리코 수리남 베네수엘라	Buiucu, Tento Chocho, Choco Agui, Caconnier Rouge, Neko-Oudou Barakaro Huayoro Palo de Matos Kokriki Peonia
테르미날리아, 갈색	<i>Terminalia catappa</i> L.		
테르미날리아, 노랑색	<i>Terminalia complanata</i> Schum. <i>Terminalia longispicata</i> V. Sl. <i>Terminalia sogerensis</i> Baker f.		
틴원	<i>Phaseolodes pendulum</i> (Benth.) Kuntze (Syn. <i>Millettia pendula</i> Benth.)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티아마	<i>Entandrophragma angolense</i> C. DC. <i>Entandrophragma congoense</i> A. Chev.	앙골라 콩고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Acuminata, Livuité Kiluka Tiama Dongomanguila Abeubêgne Edinam Gêdu-Nohor Mukusu Lifaki, Vovo <i>Tiama-Mahagoni</i> <i>Gêdu-Nohor</i>
팁보	<i>Enterolobium contortisiliquum</i> (Vell.) Morong	남 아메리카	Caro-Caro, Orejero, Pacara Earpod Tree, Tamboril, Timbo-Colorado, Timbo
티파	<i>Tipuana tipu</i> O. Ktze		
톨라 (오두마)	<i>Gossweilerodendron balsamiferum</i> Harms <i>Gossweilerodendron joveri</i> Normand ex Aubrev.	앙골라 카메룬 콩고 가봉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독일 영국	Tola branca Sinedon Tola, Tola blanc Emolo Agba Ntola <i>Agba,</i> <i>Tola branca</i> <i>Agba</i>
투바오아테	<i>Didelotia brevipaniculata</i> J. Léon.		
트레볼	<i>Platymiscium</i> spp. <i>Platycyamus regnellii</i> Benth. <i>Platymiscium pinnatum</i> (Jacq.) Dugand <i>Platymiscium trinitatis</i> Benth. (Syn. <i>Platymiscium duckei</i> Hub.) <i>Platymiscium ulei</i> Harms.	벨리제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페루 베네주엘라	Granadillo Jacaranda do Brejo, Macacauba Guayacan trebol, Trebol Coyote, Cristobal Granadillo Granadillo Granadillo Cumaseba Roble
트산야	<i>Pausinystalia macroceras</i> Pierre ex Beille (Syn. <i>Corynanthe bequaertii</i> De Wild.) <i>Corynanthe paniculata</i> Welw.		
투알랑	<i>Koompassia excelsa</i> (Becc.) Taub.	동남 아시아	Honey Bee Tree, Mangaris, Mengaris, Toale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움구시	<i>Baikiaea plurijuga</i> Harms	동 아프리카	Mukusi, Rhodesian Teak, Zambian Teak, Zambesi Redwood
우미리	<i>Humiria balsamifera</i> var. <i>floribunda</i> (Mart.) Cuatrec. (Syn. <i>Humiria floribunda</i> Mart.)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볼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주엘라	Umiri Oloroso Chanul Bois Rouge, Houmiri Bastard Bulletwood, Meri, Tauaranru, Tauroniro Quinilla Colorado Basra Bolletrie, Blakaberi, Tawanonero Nina
우룬다이	<i>Astronium balansae</i> Engl. <i>Astronium concinnum</i> Schott <i>Astronium graveolens</i> Jacq. <i>Astronium urundeuva</i> Engl.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중앙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	Urunday del Noroeste, Urunday-Mi, Urundel Cuchi Arindeúva, Aroeira-do-Sertão, Aroeira Preta, Urindeúva Urunde'y Mi Bois de Zèbre, Bossona Mura, Tigerwood, Urunday-Para, Zebrano Zebrawood, Zorrowood
베네	<i>Pterocarpus erinaceus</i> Poir. (Syn. <i>Pterocarpus africanus</i> Hook.)	부르키나 파소 적도 기니 기니 기네비소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Goni, Guenin Pau Sangue Ven Pau Sangue Goni, Ven, Vene Vene Ven, Vene
베삼바타	<i>Oldfieldia africana</i> Benth. & Hook.f.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비롤라	<i>Virola</i> spp.	중앙 아메리카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영국	Banak, Sangre, Palo de Sangre, Bogamani, Cebo, Sangre Colorado Sebo, Nuanamo Chaliviande, Shempo Yayamadou, Moulomba Dalli Banak Cumala Baboen, Pintri Cajuea Virola Cuajo, Sangrino, Camaticaro, Otivo <i>Dalli</i>
와카포우	<i>Vouacapoua</i> spp.	브라질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영국 미국	Acapu, Ritangueira Bois Perdrix, Bounaati, Epi de Blé Sara, Sarabebballi, Tatbu Brunihart, Wacapoe <i>Tatbu</i> <i>Partridgewood</i>
왈라바	<i>Eperua</i> spp.	브라질 불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주엘라	Apa, Apazeiro, Copaibarana, Espadeira Bioudou, Wapa Ituri Wallaba, Wallaba Walaba Uapa, Palo Machete
와마라	<i>Bocoa prouacensis</i> Aubl.		
왓바	<i>Tessmannia africana</i> Harms (Syn. <i>Tessmannia claessensii</i> De Wild.) <i>Tessmannia lescrauwaetii</i> (De Wild.) Harms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웬게	<i>Millettia laurentii</i> De Wild. <i>Millettia stuhlmannii</i> Taub.	카메룬 콩고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독일 프랑스 영국	Awong Wenge Awong Wenge Jambire Mpande <i>Panga-Panga</i> , <i>Panga-Panga</i> , <i>Panga-Panga</i>
조안	<i>Melia azedarach</i> L.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태국 베트남	Bakarjan, Ghora Nim, Mahanim, Mahnim Dak hien Mindi Kechil Bakain, Bakarja, Betain, Deikna, Dek, Drek, Mallan Nim Gringging, Marambung, Mindi Bakaina, Bakaino, Bakena Balalunga, Balagango, Paraiso Khian, Lian, Lian-Baiyai Xaon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	
예메인	<i>Gmelina arborea</i> Roxb.	<p>방글라데시</p> <p>인도</p> <p>미얀마</p> <p>네팔</p> <p>태국</p> <p>프랑스</p> <p>독일</p> <p>스페인</p> <p>영국</p>	<p>Gamar, Gamari, Gomari, Gumbar, Gumhar Gambhar, Gomari, Gumhar, Kambhari, Sewan Mai Saw, Yemane, Yemani, Yemari Gamari, Gambari, Gumhari, Khamari Gumari, Saw, So, So-maeo</p> <p><i>Gmelina</i>, <i>Melina</i>, <i>Peuplier d Afrique</i> <i>Gumar-Teak</i> <i>Gmelina</i>, <i>Melina</i> <i>Beechwood</i>, <i>Gmelina</i>, <i>Goomar Teak</i>, <i>Kashmir Tree</i>, <i>Malay Beechwood</i>, <i>White Teak</i>, <i>Yemane</i></p>
융구	<i>Drypetes gossweileri</i> S. Moore		
징가나	<p><i>Microberlinia</i> spp.</p> <p><i>Microberlinia bisulcata</i> A. Chev.</p> <p><i>Microberlinia brazzavillensis</i> A. Chev.</p>	<p>카메룬</p> <p>가봉</p> <p>독일</p> <p>영국</p>	<p>Allen Ele Zingana</p> <p><i>Zebrano</i> <i>Zebrano</i>, <i>Zebrawood</i></p>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 나.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다.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총설

코르크(cork)는 오로지 남유럽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에서 자라는 코르크나무(*Quercus suber*)의 외피에서 얻어진다.

최초로 박피한 것은 “버진(virgin)” 코르크라 하며 이것은 단단하고 부서지기 쉽고, 탄력성이 없으며, 품질이 나쁘고 가치가 적다. 이것의 내면은 붉은 반점이 있는 누르스름한 빛이지만 외면은 포장이고 금이 갈라져 있다.

다음에 박피하여 나오는 물품은 상업적으로 더욱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조직이 치밀하고 균등질로 되어 있으며 외면은 어느 정도의 갈라진 금이 있기는 하지만 버진 코르크(virgin cork)보다는 조잡함이 덜하다.

코르크(cork)는 가볍고 탄력성·압축성·유연성·방수성·방부성이 있으며 또한 열과 음향에 대하여 불량한 도체이다.

이 류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천연이나 응결 코르크(천연 코르크나 응결 코르크의 제품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나 제4503호의 해설 끝에서의 제외품목은 **제외한다**.

45.01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50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 : 가공하지 않은 코르크는 코르크나무(cork tree)를 박피한 곡면 슬래브(curved slab)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단순히 가공처리한 천연의 코르크에는 표면을 단순히 깎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한 것(예: 외면을 태워버림으로서)·금이 갈라진 외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한 것[정리된 코르크(cork)]이 있다. 살진균제로 처리한 것이나 끓는 물이나 증기처리를 한 후 압력을 가하여 단순히 평평하게 만든 코르크도 이 호에 분류되지만 ; 그러나 외피를 제거한 것과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502호)**.
- (2) **천연이나 응결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즉, 셰이빙(shavings)·웨이스트(waste) 조각·스크랩(scrap)] : 이것은 부순 코르크, 알갱이 모양 코르크, 잘게 부순 코르크의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코르크 울(cork wool)” 모양으로 된 코르크의 부스러기 등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때때로 충전물로서 사용한다.
- (3) **부순 코르크, 알갱이 모양 코르크, 잘게 부순 코르크** : 이것은 버진 코르크(virgin cork)나 코르크 웨이스트(cork waste)에서 만들어지며 주로 응결 코르크·리놀륨(linoleum)이나 링크러스타(lincrusta)의 제조에 사용한다. 알갱이 모양 코르크는 방열이나 방음의 재료로도 사용하며 일부는 과실의 포장용에 사용하기도 한다. 부순 코르크, 알갱이 모양 코르크, 잘게 부순 코르크는 착색·침투·열처리에 의하여 구운 것이나 팽창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하나 ; 응결된 코르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504호)**.

45.02 -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 판 모양, 시트(sheet) 모양,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천연의 코르크슬래브(cork slab)를 분류한다.

- (1) 외피[back(outer bark)]를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 **[외피를 제거한 코르크(debacked cork)]** ;
- (2) 외표면(외피)나 내표면을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거의 평평하게 만든 것**[거칠게 각을 만든 코르크(roughly squared cork)]**

이 호에는 제4501호의 코르크 나무껍질의 양면을 얇게 베고 가장자리를 직각으로 절단하여 얻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 모양으로 가공한 물품을 분류하며 하나의 코르크층을 다른 층에 올려놓고 접착제로 접착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블록(block)·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은 코르크의 제품으로 간주한다(제4503호).

종이나 직물로 보강된 코르크 시트[퀼런의 티핑(tipping)용으로 사용하는 롤(roll) 모양의 얇은 스트립(strip)을 포함한다]도 이 호에 포함한다[“코르크종이(cork-paper)”란 용어는 종이로 뒷면을 대지 않은 것일지라도 아주 얇은 시트(sheet)나 스트립 코르크(strip cork)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가장자리 각이 예리한 입방체(cube)나 정방형 슬래브(slab) 모양의 마개용의 블랭크(blank)[둘 이상의 층을 접착하여 이루어진 슬래브를 절단하여 만든 것을 포함한다]도 분류한다. 그러나 유사한 제품으로서 가장자리가 둥근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503호)**.

45.03 -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10 - 마개

4503.90 - 기타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천연 코르크(cork)로 만든 여러 가지의 마개[둥근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는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 금속·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것 등의 캡(cap)이 부착되어 있는 코르크 마개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코르크 마개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포러스토퍼(pourer-stopper)·메저스토퍼(measure-stopper)·그 밖의 물품은 그 물품의 종류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구성 재료에 따라서 **따로 분류한다**.
- (2) 병마개의 안을 대거나 병·항아리 등의 밀폐용에 사용하는 천연 코르크로 만든 디스크(disc)·와셔(washer)와 웨이퍼(wafer) ; 병목의 내측에 사용하는 코르크제의 안감이나 셸(shell)
-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천연 코르크로 만든 블록(block)·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 ; 구멍구·어망용 부표·욕실용 매트(bath-mat)·테이블 매트(table-mat)·타자기 매트·그 밖의 매트
- (4) 여러 가지의 손잡이(칼 손잡이 등)·와셔(washer)·개스킷(gasket)[**제8484호**에 분류하는 소포장한 세트(set)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삭스(socks))을 포함한다]
- (b)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c)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 병마개에 코르크디스크(cork disc)로 안을 댄 것(**제8309호**)
- (d) 코르크(cork)로 만든 카트리지 와드(cartridge wad)(**제9306호**)
- (e)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낚시줄용의 찌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제95류**)



[소호해설]

소호 제4503.10호

소호 제4503.10호의 마개(cork and stopper)는 측면이 직선이거나 끝이 뾰족한 원통형의 모양이나 옆 가장자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프리즘 모양을 하고 있는 천연 코르크(cork)의 조각들이다. 이들 마개는 염색한 것·광택처리한 것·파라핀 처리한 것·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소인한(fire- or dye-branded) 것도 있다. 천연 코르크마개 중 어떤 것은 머리부분을 크게 하거나 금속·플라스틱(plastic) 등으로 모자를 씌우고 있다. 마개는 플러그(plug)로 용기를 밀폐하는데 사용한다. 중공(中空)의 마개(또는 shell cork)는 예를 들면, 유리병이나 도자기병의 유리마개의 피복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소호에는 마개의 블랭크(blank)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장자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다.

이 소호에는 병마개에서 봉인용으로 사용하는 얇은 코르크디스크(cork disc)는 **제외한다**(소호 **제4503.90호**).

45.04 - 응결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결 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 - 블록 ·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 솔리드 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4504.90 - 기타

응결 코르크(agglomerated cork)는 부서진 모양 · 알갱이 모양 · 가루 모양의 코르크를 일반적으로 가열과 가압하여 응결함으로써 제조되며 그 제조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1) 결합물질[예: 미가황고무 · 글루(glue) · 플라스틱 · 타르(tar) · 젤라틴(gelatin)]을 첨가하는 방법이나
- (2) 섭씨 300°C 정도의 온도에서 응집제를 첨가하지 않는 방법. 이 경우에는 코르크 내에 있는 천연의 고무질이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응결 코르크를 침투시킨 것(예: 기름으로)이나 종이나 직물로서 보강시킨 것은 그것이 **제5904호**에 분류하는 리놀륨(linoleum)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응결 코르크는 천연 코르크의 성질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방열이나 방음에 대하여 우수한 재료이다. 그러나 응결에 필요한 결합제의 첨가는 많은 경우 코르크의 특성의 일부 특히 비중과 인장강도나 압축강도를 변화시킨다. 이밖에 응결 코르크는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직접 성형하는데 적합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응결 코르크는 제4503호에 열거된 범주에 속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개의 제조용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병마개용 디스크(disc)에는 천연 코르크보다 더 자주 사용한다.

응결 코르크는 천연 코르크에 우선하여 패널(panel) · 블록(block) · 타일(tile) 등과 같은 건축 재료용으로 사용하며 여러 가지 모양[원통형 · 셀(cell)형 등]으로 구조하여 온수나 증기 배관의 단열과 보호 재료용, 석유파이프라인의 피복재료용 · 건설산업에서의 신축이음용 · 필터(filter)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4503호의 해설을 참조한다.

제 4 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주:

1.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그 밖의 스트립(strip)],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다만,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과 실,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4814호의 벽 피복재
 - 나. 끈, 배의 밧줄(cordage), 로프, 케이블(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제5607호)
 - 다. 제64류나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와 이들의 부분품
 - 라.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로 만든 차량과 차체(제87류)
 -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3. 제4601호에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이란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시트(sheet) 모양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에 상관없다.

총설

수세미제품 이외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않은 재료를 인터레이싱(interlacing), 직조, 그 밖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와 특정의 제품(제4601호와 제4602호)을 분류하며 특히 사용하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골풀(rush)·등(rattan)·갈대·칩우드(chipwood) [목재의 얇은 스트립(strip)]·인발재·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 단, 이들이 플레이팅(plaiting), 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2) 방적하지 않은 천연방직용 섬유
- (3)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스트립·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치수가 1mm 이하인 모노필라멘트 또는 시폭(視幅: apparent width)이 5mm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 (4) 종이의 스트립(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것을 포함한다)

제9부
제46류

(5) 방직용 섬유(섬유)의 심(core)[방직되지 않은 섬유, 브레이드(braid) 등]에다 플라스틱의 스트립을 감거나 씌운 것이나 플라스틱을 두껍게 도포시킨 것으로 구성된 재료[이들 재료는 그 물품의 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나 브레이드(braid)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이러한 재료 중 특정의 것(특히 식물성 생산품)은 플레이팅, 인터레이싱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조제되어 있는 것[예: 분할·인발·탈피 등을 하거나 왁스(wax)·글리세롤(glycerol) 등으로 침투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조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만든 물품이나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i) 말의 털(제0511호나 제11부)

(ii) 횡단면의 치수가 1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시폭(apparent width : 즉, 접혀진 상태·평평한 상태·압축된 상태·꼬임상태에 있어서)이 5mm를 초과하지 않는 인조섬유제의 스트립(strip)과 평판 모양의 튜브(tube)[길이방향으로 접은 것을 포함하며 압축이나 꼬임 모양(인조 스트로(straw)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 것에 상관없다](제11부)

(iii)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위 (5)항에 기재된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피복한 것은 제외한다](제11부)

(iv)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sheath)한 방직용 섬유사(제11부)

(v)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일반적으로 제41류나 제42류)나 펠트(felt)·부직포(제11부)의 스트립(strip)과 사람 머리카락(제5류·제59류·제65류·제67류)

이밖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마구류(제4201호)

(b) 제44류의 대나무 제품

(c) 제4814호의 벽 피복재

(d)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cable)(얽은 것이나 방직하지 않은 방직용섬유의 것도 포함한다)(제5607호)

(e)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warp)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bolduc)](제5806호)

(f) 제64류의 신발이나 그 부분품

(g)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모체(hat-shape)를 포함한다]

(h) 채찍(제6602호)

(ij) 조화(造花)(제6702호)

(k)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l)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m)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n) 비와 솔(제9603호) 및 마네킹 인형 등(제9618호)

46.01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 -- 대나무로 만든 것

4601.22 -- 등나무로 만든 것

4601.29 -- 기타

- 기타

4601.92 -- 대나무로 만든 것

4601.93 -- 등나무로 만든 것

4601.94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1.99 -- 기타

(A)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플레이트(plait)** : 이것은 조물 재료를 기계나 손으로 대개 종의 방향으로 조합하여 만든 스트랜드(strand)로 되어 있으며 경사와 위사가 없다. 조물 재료의 성질·색·두께와 가닥수·조합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른 장식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플레이트는 나란히 연결하고 봉합함으로써 광폭의 스트립(strip)으로 조합되는 수도 있다.

- (2) **플레이트(plait)와 유사한 물품** : 이것은 엮는 가공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나 플레이트와 용도가 같거나 비슷하다. 또한 이것은 조물 재료를 가지고 긴 가죽끈 모양·스트립 모양 등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두 개 이상의 스트랜드(strand)를 상호 꼬거나 결합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조립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물품(**제4602호**의 장식용 모티브는 **제외한다**)

(b) 압착하지 않은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꼬아서 조립한 코드(cord)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만든 물품[예: 거래상으로는 “차이나코드(China cord)”로 알려져 있는 것]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은 주로 여성모자의 장식용으로 사용하며, 가구·신발류·매트(mat)·바구니·그 밖의 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에는 주로 조립용이나 보강의 목적으로 방직한 방직용 섬유의 실(부수적인 장식효과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을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B)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였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의 것에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 없다]

여기에 속하는 물품은 해당 류의 총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물 재료나 위의 (A)에서 기술하고 있는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얻어진다.

조물 재료에서 직접 얻어지는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경사(經絲 : warp)와 위사(緯絲 : weft)로 된 직물의 제조방법과 같이 스트랜드(strand)를 엮어서 만들거나 스트랜드의 위치를 평행되게 나란히 놓고 시트 모양으로 유지하도록 실이나 가닥을 가로지르게하여 만들어진다.

직조한 물품은 조물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조물 재료의 경사(經絲)와 방직용 섬유(緯絲)로 만드는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방직용 섬유의 기능(부수적으로 색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한다)이 단지 그 조물 재료를 조합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찬가지로 조물 재료의 가닥을 평행으로 조합시켜 만드는 물품의 경우에 사용하는 조합 재료는 조물 재료·방직용 섬유의 실·그 밖의 재료인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결합공정이나 직조공정은 위의 (A)에서 설명된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에서 시트 모양의 물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

여기에 분류하는 물품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종이로서 보강한 것·뒤를 댄 것·안을 댄 것도 있으며 다음의 물품도 포함한다.

(1) **반제품** : 라피아(raffia)·등나무·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것으로서 ; 여성 모자의 장신구·가구제조업 등에 사용하는 래핑(lapping) 모양이나 스트립(strip) 모양으로 만든 장식용의 것

(2) **특정의 완성품**, 예:

(a) 매트류(mats and matting)(바닥깔개 등) : 이들은 조물 재료[나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의 스트랜드(strand)를 평행으로 놓고 그 밖의 다른 조물 재료[끈, 코드(cord) 등]와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특히 소위 중국식(또는 인도식)의 매트류(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

(b) 원예용에 사용하는 짚으로 만든 매트(straw mat)와 같은 조잡한 매트

(c) 스크린(screen)이나 패널(panel)(예: 버드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것) ; 조물 재료나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짚·갈대 등)을 평행으로 나열하여 압축하고 비금속선을 사용하여 규칙적인 간격으로 조합시켜 만든 건축용 패널(panel). 이러한 건축용 패널이나 슬래브(slab) 중에는 표면과 가장자리 전부가 크라프트(kraft) 판지로 피복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코이어(coir)나 사이잘(sisal) 섬유로 만든 매트류와 배의 밧줄(cordage)나 방직용 섬유 직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유사품은 **제외한다(제57류)**.

46.02 -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11 -- 대나무로 만든 것

4602.12 -- 등나무로 만든 것

4602.19 -- 기타

4602.90 - 기타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i) 조물 재료로부터 직접 조형한 물품 ;

(ii) 이미 조립한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제품 : 즉,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부터 만들었거나 스트랜드(strand)를 평행하게 놓고 조합한 물품이나 시트 모양으로 직조한 물품으로부터 만든 제품

다만, 이 호에는 제4601호의 완성품, 즉, 가닥을 평행하게 놓고 조합하였거나 시트 모양[예: 매트류(mat, matting)나 스크린(screen)]으로 직조함으로써 완성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4601호 해설(B)(2) 참조) ; 그리고

(iii) 수세미 제품[장갑·패드(pad) 등](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바구니·망태기·광주리·그 밖의 여러 가지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용기류[어업용과 과실용의 바구니를 포함하며 롤러(roller)나 다리바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2) 칩우드(chipwood)를 합쳐 짜서 만든 유사한 바구니나 상자. 그러나 합쳐 짜지 않은 칩우드로 만든 칩바구니(chipbasket)는 **제외한다(제4415호)**.

(3) 여행용의 가방과 케이스

(4) 핸드백·쇼핑백(shopping-bag)·그 유사물품

(5) 바닷가재 잡는 통발과 그 유사물품 ; 새장과 벌집

(6) 쟁반·병홀더(bottleholder)·양탄자를 치는 기구(carpet-beater)·식탁·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7) 여성모자의 장식품과 그 밖의 장식품(**제6702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짚으로 만든 병 넣는 상자. 이러한 물품은 대개 조잡한 짚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를 엉성하게 나란히 놓고 실이나 코드(cord)와 결합시킨 중공의 원추의 모양으로 되어있다.

(9) 길이가 긴 플레이트를 정사각형, 원형 등으로 조립하여 끈으로 묶어 만든 매트(mat)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주:

1.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와 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92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의 경우 회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이 류의 펄프(pulp)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재료나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섬유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로 되어 있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펄프는 목재펄프(wood pulp)로서 그 제조방법에 따라 기계목재펄프(mechanical wood pulp), 화학목재펄프(chemical wood pulp), 반화학목재펄프(semi-chemical wood pulp), 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로 불리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원목은 소나무, 가문비나무, 포플러(poplar), 사시나무나 너도밤나무, 밤나무, 유칼립투스(eucalyptus), 특정 열대산목재와 같은 단단한 목재도 사용한다.

펄프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면 린터(cotton linter)
- (2)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
- (3) 닝마(특히 면·아마·대마)와 중고 로프(old rope) 등 그 밖의 방직용 웨이스트(waste)
- (4) 짚·에스파르트(esparto)·아마·라미(ramie)·황마·대마·사이잘(sisal)·사탕수수·대나무·그 밖의 풀과 갈대

목재펄프(wood pulp)는 갈색이거나 백색이다. 목재펄프는 표백되지 않은 상태로 있거나 화학 약품을 사용 반표백이나 표백시키기도 한다. 제조 후 백색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처리를 한 펄프는 반표백이나 표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펄프(pulp)[특히 표백펄프(bleached pulp)]는 인조 섬유·플라스틱·바니시(vernish)·화약 등의 여러 가지 물품을 제조할 때 섬유소의 재료로 사용하며 또한 가축의 사료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펄프는 일반적으로 건조나 습한 것을 판 모양으로 포장하여(구멍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시하나 때로는 슬래브(slab) 모양, 롤(roll) 모양, 고운 가루와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면 린터(cotton linter)(**제1404호**)
 - (b) 비간섭성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시트로 만든 합성제지용 펄프(**제3920호**)
 - (c) 섬유판(**제4411호**)
 - (d) 제지용 펄프(paper pulp)의 필터블록(filter block), 슬래브(slab)와 판(**제4812호**)
 - (e) 제지용 펄프의 그 밖의 제품(**제48류**)
-

47.01 - 기계목재펄프

기계목재펄프(mechanical wood pulp) : 오로지 기계적인 공정에 의하여 얻어진다. 즉, 나무껍질과 때로는 마디를 제거한 목재를 물을 통과시키면서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분쇄하여 섬유상태로 만드는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다.

증기처리를 하지 않고 분쇄함으로써 소위 “화이트(white)”기계목재펄프가 제조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섬유가 파괴되고 연하게 된다. 목재를 분쇄하기 전에 증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하지 않은 것보다도 강한 갈색의 섬유가 얻어진다(브라운 기계목재펄프).

전통적인 분쇄방법으로부터 더욱 발전한 것이 리파이너 기계펄프(refiner mechanical pulp)로 일컬어지는 펄프(pulp)이며 이 경우 목재의 칩(chip)을 간격이 아주 적은 두 개의 ridged plate (하나만 회전하거나 둘 다 회전한다) 사이에 통과시킴으로써 그 칩은 디스크 리파이너(disc refiner)에서 더욱 더 작은 조각으로 된다. 이러한 종류의 펄프(pulp) 가운데에서 우량등급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는 목재의 칩(chip)을 정제하여 얻어지는데 정제하기 전에 목재의 칩으로 하여금 열처리를 받게 하여 연하게 만듦으로서 섬유의 손상을 적게 하면서 섬유와 비섬유와의 분리를 더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지는 펄프(pulp)의 질은 전통적인 기계목재펄프의 질보다 우수하다.

주요한기계목재펄프(mechanical wood pulp)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숫돌쇄목펄프(SGW : stone groundwood) : 대기압력하에서 통나무나 블록(block)을 숫돌연마기에 넣어 생산한다.

공기가압식 숫돌쇄목펄프(PGW : pressurised stone groundwood) : 공기가압식 쇄목 숫돌에 통나무나 블록(block)을 넣어 생산한다.

리파이너 기계펄프(RMP : refiner mechanical pulp) : 대기압력 하에서 명주정련용 리파이너기(refiner)에 목재칩(wood chip)이나 웨이퍼(wafer)를 넣어 생산한다.

열기계펄프(TMP : thermo-mechanical pulp) : 목재를 고압수증기 처리한 후 리파이너기에 목재칩이나 웨이퍼를 넣어 생산한다.

리파이너로 생산되는 펄프 중 어떤 것은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것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펄프는 제4705호에 해당한다.

기계목재펄프는 그 섬유가 비교적 길이가 짧아서 약한 물품을 생산하므로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종이를 제조할 때에는 종종 화학펄프(chemical pulp)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신문용지도 일반적으로 그러한 혼합물로부터 만들어진다(제48류의 주 제4호 참조).

47.02 -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만을 분류한다. 이러한 펄프(pulp)는 의도한 용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정제한다.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는 재생셀룰로오스(regenerated cellulose),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에스테르(ester)와 판(plate)·시트(sheet)·필름(film)·박·스트립(strip)과 같은 이들 셀룰로오스(cellulose) 물품, 방직용 섬유, 특정의 종이(예: 감광지·필터지(filter paper)·황산지의 원지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펄프(pulp)는 최종 용도와 최종 물품에 따라 비스코스펄프(viscose pulp)·아세테이트 펄프(acetate pulp)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화학목재펄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재를 칩(chip)이나 파티클(particle) 모양으로 분쇄한 후 화학처리를 하여 제조한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리그닌(lignin)과 그 밖의 비셀룰로오스(non-cellulose) 부분이 제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소다(soda)”법]·황화나트륨(sodium sulphide)으로 일부가 변화되는 황화나트륨(sodium sulphide)과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의 혼합물[황산연공법(“sulphate”process)]·아황산칼슘(calcium sulphite)·아황산마그네슘(magnesium bisulphite)[각각 아황산수소칼슘(calcium hydrogen sulphite)·아황산수소마그네슘(magnesium hydrogen sulphite)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아황산염공법(“sulphite”process)]들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물품은 똑같은 원료로 만든 기계목재펄프에 비하여 섬유의 길이와 셀룰로오스(cellulose)의 함유량이 우수하다.

용해용 화학목재펄프의 제조는 광범위한 화학반응과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표백 이외에, 이 화학목재펄프의 제조에는 화학적인 정제, 수지의 제거, 해중합, 회분함량의 감소, 반응도 조절이 필요하기도 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복합표백과 정제공정을 병행한다.

47.03 -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703.1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703.1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703.2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소다펄프(soda pulp)나 황산펄프(sulphate pulp)는 보통 칩(chip) 모양의 목재를 강한 알칼리(alkaline)용액에서 끓임으로써 제조한다. 소다펄프를 제조할 때의 증해액은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용액이며 황산펄프에 있어서는 변성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한다. 일부가 황화나트륨(sodium sulphide)으로 변화한 황산나트륨(sodium sulphate)이 증해액의 조제단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황산염(sulph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들 펄프(pulp) 중 황산펄프(sulphate pulp)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공정을 거친 펄프(pulp)는 고인열강도, 인장강도, 파열강도를 요구하는 종이·판지와 흡수력이 있는 물품[플러핑(fluffing)과 냅킨(기저귀)]의 제조에 사용한다.

47.04 -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704.1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704.2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아황산법(sulphite process)에는 일반적으로 산(酸)의 용액을 사용하며 아황산법이라는 명칭도 증해액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아황산칼슘(calcium bisulphite)[아황산수소칼슘(calcium hydrogen sulphite)]·아황산마그네슘(magnesium bisulphite)[아황산수소 마그네슘(magnesium hydrogen sulphite)]·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phite)[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phite)]·아황산암모늄(ammonium bisulphite)[아황산수소암모늄(ammonium hydrogen sulphite)] 등의 다양한 “아황산(sulphite)”화학약품으로부터 채택한 것이다(제4702호 해설 참조). 또한 산의 용액에 유리(遊離) 이산화황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황산법은 전나무 섬유 처리에 널리 사용한다.

아황산펄프(sulphite pulp)는 단독이나 그 밖의 펄프(pulp)와 혼합하여 여러 가지의 필기용지와 인쇄용지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아황산펄프는 특히 내지지(耐脂紙 : greaseproof paper)나 투명한 광택지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47.05 -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이 호에는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에 의하여 제조되는 목재펄프를 분류하며 이들 펄프를 반화학펄프(semi-chemical pulp)·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반화학펄프(semi-chemical pulp)는 두 부분의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일반적으로 첫째 공정에서는 칩(chip) 모양의 목재를 침지기(浸漬器 : digester)에 넣어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한 다음 기계적으로 정제한다. 반화학펄프는 많은 불순물과 목질(木質)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주로 중간 정도 품질의 종이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반화학펄프는 중성아황산염 반화학펄프(NSSC : neutral sulphite semi-chemical)·아황산수소반화학펄프(bisulphite semi-chemical pulp)나 크라프트반화학펄프(kraft semi-chemical pulp)로 알려져 있다.

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는 칩(chip)·대팻밥·툽밥·이와 유사한 모양의 목재를 리파이너기(refiner)에서 정제하여 생산한다. 그 목재는 간격이 좁은 두 개의 두둑이 있는 플레이트(plate)나 디스크(disc)(두 개 중 하나만 회전하거나 둘 다 회전한다)에 의한 연마작용으로 분쇄되어 섬유상태가 된다. 섬유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화학약품이 전처리나 정제과정 중에 투입된다. 그 목재는 모양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압력과 온도에서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증기처리를 받기도 한다. 그 펄프(pulp)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채택되는 공정결합과 공정순서에 따라 화학-기계펄프는 화학-열기계펄프(CTMP)·화학-리파이너기계펄프(CRMP)나 열화학-기계펄프(TCMP)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특히 신문용지 생산에는 화학-기계펄프를 사용한다(제48류의 주 제4호 참조). 또한 화학-기계펄프는 티슈(tissue)와 그래픽용지(graphic paper)를 만드는데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스크리닝(screenings)으로 알려진 펄프도 포함한다.

47.06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4706.2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706.3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4706.91 -- 기계펄프

4706.92 -- 화학펄프

4706.93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펄프 제조에 사용하는, 목재 이외의 가장 중요한 섬유 상태의 셀룰로오스(cellulose) 재료의 종류는 해설서 총설에서 명시하고 있다.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나 판지에서 뽑아낸 섬유펄프(pulp of fibre)는 보통 건조, 베일(bale) 포장한 시트(sheet) 모양으로 제시하며 다른 종류의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로 혼합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섬유펄프를 표백하였거나 표백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련의 기계적이거나 화학적 세정·선별·탈잉크(de-inking) 공정에 의해 얻는다. 이들 펄프(pulp)는 투입 재료나 가공 정도에 따라 잉크(ink)·점토·전분·중합체 코팅제(polymer coating)·글루(glue)와 같은 잔유물을 소량 함유하기도 한다.

회수한(웨이스트와 스크랩)종이나 판지에서 뽑아낸 펄프(pulp)를 **제외한** 이 호의 펄프는 기계공정·화학공정·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에 의해 생산한다.

47.07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4707.1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 4707.2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707.3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 4707.9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종이나 판지의 웨이스트(waste)에는 대팻밥·절편·소편·파편·오래된 신문·오래된 잡지·교정지·인쇄폐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료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스크랩(scrap) 물품도 포함한다.

이러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일반적으로 펄프(pulp) 제조용으로 사용하며 종종 압축된 베일(bale)상태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으로서 다른 용도[예: 포장(packaging)]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페이퍼 울(paper wool)은 종이의 웨이스트(waste)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823호)**.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한 종이나 판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예: 은이나 은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사진인화지·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112호)**.



[소호해설]

소호 제4707.10호·제4707.20호와 제4707.30호

원칙적으로 소호 제4707.10호·제4707.20호·제4707.30호에는 선별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는데 제4707호의 그 밖의 소호에 해당하는 종이나 판지가 소량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소호의 분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4 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종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판지(두께나 1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30류의 물품
 - 나.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
 - 라.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5호)
 - 마.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성 종이와 판지
 - 바. 진단용 시약이나 실험용 시약을 침투시킨 종이(제3822호)
 - 사.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39류)
 - 아. 제4202호의 물품(예: 여행용구)
 - 자. 제46류의 물품(예: 조물 재료의 제품)
 - 차. 종이실(paper yarn)이나 종이실로 만든 방직용 섬유류의 제품(제11부)
 - 카. 제64류나 제65류의 물품
 - 타. 연마용 종이·판지(제6805호), 운모를 붙인 종이·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 가루를 도포한 종이나 판지는 이 류로 분류한다.
 - 파. 종이나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箔)(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 하. 제9209호의 물품
 -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3. 주 제7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며,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는 캘린더가공·슈퍼캘린더가공·광택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의사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표면사이징을 한 종이와 판지,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종이·판지,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호들은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0부
제48류

4. 이 류에서 “신문용지”란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도포하지 않은 종이로서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사이징을 안 하거나 극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이며, 양면의 조활도(粗滑度) 파커프린트서프(Parker Print Surf)(1메가파스칼)가 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를 초과하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65그램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종이에만 적용한다.
- 가. 폭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
-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5. 제4802호에서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용 종지와 판지” 그리고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 테이프지”란 주로 표백펄프,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을 통해 얻은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종지와 판지를 말한다.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tea-bag)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펠트판지는 제외한다.
-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 2)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 3)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것
 - 4)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8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며 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 5)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이고 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 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전체를 착색한 것
 - 2)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가)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거나
나)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를 초과하고 508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 3)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고, 두께가 254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
-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 또는 펄트판지는 제외한다.
6.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종지와 판지를 말한다.
7. 그 밖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제4801호부터 제4811호까지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은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8.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 가.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9. 제4814호에서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이 경우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갈개와 벽 피복재로 사용하는 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4823호로 분류한다.
- 가. 벽이나 천장의 장식에 적합하도록 폭이 45센티미터 이상 160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종이로서 다음의 것
- 1)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표면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섬유플록 등으로 그 밖의 표면장식을 한 것(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목재·짚 등의 파티클(particle)을 결합하여 표면이 평탄하지 않은 것
 - 3) 플라스틱으로 한 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플라스틱층을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나 그 밖의 장식을 한 것
 - 4) 조물 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였는지 또는 직조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 한 면을 피복한 것
- 나. 종이로 만든 테와 프리즈(frieze)로서 위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이나 천장 장식에 적합한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다. 여러 장의 패넬로 구성되는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로서 벽에 부착할 때 풍경·디자인·모티프(motif)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10. 제4820호는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루스시트(loose sheet)와 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인쇄하였는지, 울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4823호는 특히 자카드(Jacquard)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구멍을 뚫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카드, 종이로 만든 레이스에 적용한다.
12.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소호주

1. 소호 제4804.11호와 제4804.19호에서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15그램을 초과하며, 아래 표에 표시된 뮐렌(Mullen) 파열강도의 최저가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插)이나 외삽(外插)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계적으로 완성가공하였거나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롤 모양인 종이나 판지를 말한다.

평량 (그램/제곱 미터)	뮐렌파열강도의 최저치 킬로파스칼(kPa)
115	393
125	417
200	637
300	824
400	961

제10부
제48류

2. 소호 제4804.21호와 제4804.29호에서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제곱미터의 중량이 60그램 이상 115그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롤 모양의 기계적 완성가공처리를 한 종이를 말한다.
- 가. 뮐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3.7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서 가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고, 세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 나. 인열(引裂)강도의 최저치와 인장(引張)강도의 최저치가 아래 표에 표시된 수치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插)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

평량 (g/m ²)	인열강도의 최저치 엠엔(mN)		인장강도의 최저치 케이엔/엠(kN/m)	
	세로방향	세로방향+가로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가로방향
60	700	1,510	1.9	6
70	830	1,790	2.3	7.2
80	965	2,070	2.8	8.3
100	1,230	2,635	3.7	10.6
115	1,425	3,060	4.4	12.3

3. 소호 제4805.11호에서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란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표백하지 않은 활엽수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으로서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분의 50, 섭씨 23도에서 1.8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종이를 말한다.
4. 소호 제4805.12호는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스트로펠프(straw pulp)를 주로 하여 만들어진 롤 모양인 종이를 포함한다[1제곱미터당 중량이 130그램 이상이고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분의 50, 섭씨 23도에서 1.4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소호 제4805.24호와 제4805.25호는 전부나 주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테스트라이너(testliner)는 착색된 표층이나 표백·미표백인 비재생펄프로 만든 표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들의 제품은 뮐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2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이다.
6. 소호 제4805.30호에서 “아황산 포장지”란 아황산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 이하로 뮐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1.47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7. 소호 제4810.22호에서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란 기계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종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양면을 도포한 1제곱미터의 총중량이 72그램 이하인 종이로서 1면당 도포량이 1제곱미터당 15그램 이하인 종이를 말한다.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이 주에서는 뮐렌(Mullen) 파열강도의 최저치를 킬로파스칼(kPa)로 표시하며 이와 동등한 범위의 1제제품 센티미터(cm)당 그램수치는 다음과 같다.

평량 (g/m ²)	kPa	g/cm ²
115	393	4,030
125	417	4,250
200	637	6,500
300	824	8,400
400	961	9,800

중간수치(내삽)나 400그램을 초과하는 수치(외삽)는 다음의 공식을 기초로 산출한다.

기본 평량	뮐렌(Mullen)파열강도최저치 g/cm ²
1제곱미터(m ²)당 125그램 이하	기본평량(g/m ²)×22+1,500
1제곱미터(m ²)당 125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	기본평량(g/m ²)×30+500
1제곱미터(m ²)당 200그램 초과 300그램 이하	기본평량(g/m ²)×19+2,700
1제곱미터(m ²)당 300그램 초과	기본평량(g/m ²)×14+4,200

소호주 제2호

소호주 제2호에 표시된 수치에 해당하는 1제곱미터(m²)당 중량의 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를 기초로 최저치를 산출할 수 있다(오차 100분의 2 이하).

	최저치
인열강도, 세로방향(mN) [0 밀리 뉴톤이나 5 밀리 뉴톤까지 반올림]	기본평량(g/m ²)×13.23 - 94.64
인열강도, 세로방향+가로방향(mN) (상기와 같이 반올림)	기본평량(g/m ²)×28.22 - 186.2
인장강도, 가로방향(kN/m)	기본평량(g/m ²)×0.0449 - 0.8186
인장강도, 세로방향 +가로방향(kN/m)	기본평량(g/m ²)×0.1143 - 0.829

총설

이 류의 해설에 있어서 종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종이(paper)”에는 판지(두께와 중량에는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제47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종이는 본질적으로 제 47류 펄프(pulp)의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ic fibre)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셀룰로오스섬유가 시트(sheet) 모양으로 펠트(felt)화되어 있다. 특정의 티-백재료(tea-bag material)와 같이 많은 물품들은 이들 셀룰로오스섬유와 방직용 섬유(특히 제54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인조섬유)의 혼합물로 되어있다.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물품은 종지로 간주하지 않고 부직포(nonwoven)로 분류한다(제5603호).

다른 측정방법의 사용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48류의 종지와 판지의 물리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각국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류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래의 분석과 물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ISO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회분 함유량 :

ISO 2144 종이와 판지회분 측정

백색도 :

ISO 2470 종이와 판지확산 청색 반사율(ISO 백색도)

파열강도와 파열강도지수 :

ISO 2758 종이파열강도 측정

ISO 2759 판지파열강도 측정

CMT 60(압축강도) :

ISO 7263 골심지실험실적 홈 만들기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

섬유 구성 :

ISO 9184/1-3 종이·판지·펄프(pulp) ...섬유 지료 분석

평량(중량) :

ISO 536 종이와 판지평량 측정

파커(Parker) 프린트-서프(Print-Surf) 표면 거칠기 :

ISO 8791/4 종이와 판지거칠기/평활도 결정 (공기 누출법)

단일 시트 두께[칼리퍼(caliper)] :

ISO 534 종이와 판지두께와 겹보기 용적 밀도나 겹보기 종이 밀도의 측정

인열 강도 :

ISO 1974 종이인열 강도의 측정[엘멘도르프(Elmendorf) 방법]

인장 강도와 신장 :

ISO 1924/2 종이와 판지인장 특성의 결정 - Part 2 : 정속 신장률법

제지공정은 기계로 하든 손으로 하든 3단계의 공정, 즉, 펄프(pulp)의 준비공정, 시트(sheet)나 웹(web)의 형성공정, 완성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펄프(pulp)의 준비공정

펄프(pulp)는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물, 사이즈(size) 물질이나 염료를 혼합하여 물로 희석하고 기계로 휘저음으로써 적당한 농도로 조제한다.

일반적으로 무기물질[예: 고령토(China clay) ·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인 충전물은 불투명도의 증대, 인쇄적성의 개선이나 펄프(pulp)의 절약을 위하여 사용한다. 잉크(ink) 등에 대한 흡수성을 적게 하기 위하여 사이즈(size)(예: 명반을 혼합한 송진)를 사용한다.

시트(sheet)나 웹(web)의 형성

(A) 기계식의 종이와 판지

기계식의 제지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포우드리어법(Fourdrinier process)이다. 이 방법에서는 위와 같이 조제된 펄프(pulp)를 인조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의 커다란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나 황동선이나 청동선(일반적으로 전진식으로 진동한다) 위에 있는 헤드박스(head box)를 통하여 주입하며 증력과 테이블롤(table roll), 황청동선의 밀을 따라 놓은 호일(foil)이나 흡입상자에 의하여 대부분의 펄프의 물이 흡입되어 없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섬유질은 펄트(felt)화되며, 웹(web) 모양의 유연한 종이로 된다. 일부 기계에서는 이러한 웹(web)을 금속선이 피복된 롤(roll)[댄디롤(dandy-roll)]에 통과시킴으로써 경화(硬化)되고 평활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댄디롤(dandy-roll) 커버(cover) 표면에 엠보스 디자인(embossed design)이나 라인이펙트(line effect)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워터마크(watermark)를 새긴다. 다음에 이 웹(web)은 펄트(felt)로 만든 엔드리스벨트(endless belt)와 프레스섹션(press section)에 통과하여 더욱 경화된다. 그리고 나서 가열된 원통 위를 통과시키면서 건조한다.

다른 선택가능한 방법으로서 트윈 와이어 포머(twin wire former) 방법(특히 신문용지의 제조에 사용한다)이 있다. 펄프(pulp)가 2개의 포밍롤(forming roll) 사이를 통과하여 두 개의 “선(wire)” 사이로 운반된다. 물이 양선으로부터 비껴서 흘러 흡입상자(suction box)와 흡인롤(suction roll)에 흡수되어 웹(web)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새로 형성된 웹은 프레스부(pressing section)와 건부(dryer section)의 흡인장치로 인도된다. 종이의 양면을 형성하는 트윈선(twin wires)은 똑같으므로 포우드리어법으로 제조한 종이의 특성인 펄트(felt)면과 와이어(wire)면을 제거시킨다.

그 밖의 형태의 기계에서는 포우드리니어 금속선 대신에 와이어거즈(wire gauze)로 피복된 대형 실린더(large cylinder) [“몰드(mould)”]를 사용하는데 이 실린더가 회전되면서 조제된 펄프(pulp)가 감긴다. 이 실린더는 펄프층을 거두어서 종이의 웹(web)으로 성형시켜 길이가 긴 건조 펄트(felt)로나 로울(roll)의 표면을 절단하여 시트(sheet) 모양의 건조 펄트(felt)로 전환시켜 준다. 공정을 약간 바꾸면 직경이 큰 롤(roll)의 주위에 층을 만들며 이 층이 적당한 두께로 되었을 때 절단하기도 한다.

멀티플와이어(multiple wire)나 실린더몰드(cylinder mould)가 있는 기계[또는 포우드리니어·와이어·실린더몰드를 조합한 것]는 여러 층(때로는 색과 품질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다)으로 된 판지 제조에 사용하는데 이때 접착제의 사용함이 없이 판지는 동시에 만들어지고 젖어있는 상태에서 롤(roll) 모양으로 감기어진다.

(B) 수제(手製 : hand-made)의 종지와 판지

수제(手製 : hand-made)의 종지와 판지의 제조에 있어서 다른 공정은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펄프 섬유를 시트(sheet) 모양으로 주형하는 본질적인 공정은 손으로 이루어진다.

수제(手製)의 종지와 판지는 여러 가지의 제지원료로 만들어지나 일반적으로 고급 린넨(linen)과 면의 엉마를 사용한다.

시트(sheet)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일정량의 펄프를 체 모양의 주형 위에서 흔들어 대부분의 수분을 제거한후 섬유질을 펄트(felt)화 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 시트 모양을 주형으로부터 떼어내어 펄트 사이에 끼워 압축한 후 건조시킨다.

섬유가 펄트화되는 수(手) 주형(hand mould)은 평행하게 놓인 금속선이나 직조된 철망(망사)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종이 위에 워터마크(watermark)를 새긴다. 워터마크 디자인(watermark design)은 금속선에 따라서 새겨지기도 한다.

수제(手製) 종지의 특성은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으며 표면이 깔깔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것은 특수 용도 즉 은행권 용지, 증서 용지, 도화 용지, 에칭 용지, 특수 여과지, 대장, 포장지, 고급 인쇄용지와 사무용지로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웨딩카드(wedding card), 레터헤드(letterhead), 캘린더(calendar) 등에도 사용한다.

수제(手製) 종지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 규격을 맞추어 제조하면 깃털 모양으로 된 4개의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 그러나 가끔 이러한 것을 재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의 기계지, 특히 주형지도 역시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양으로는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기계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현저한 깃털의 모양으로 되지는 않는다.

완성가공(finishing operation)

종지는 캘린더가공(calendering)이나 슈퍼캘린더가공(supercalendering)[제지기에 부착된 캘린더 기계나 분리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을 하는 수가 있다(필요한 경우에는 처음에 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지의 한 면이나 양면을 다소 윤활하고 광택있게 한다. 종이 한 면의 이와 유사한 표면은 가열 원통을 사용하는 기계광택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일종의 가짜 워터마크(false watermarking)를 종지에 새기는 수도 있다. 대부분 보통의 필기용지, 인쇄용지와 도화용지는 예를 들면, 글루(glue)나 전분용액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표면 사이즈(size)를 하는데 이것은 종지의 표면강도와 수성액[예: 필기용 잉크(ink)]의 침투나 확산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포한 종이와 판지(coated paper and paperboard)

이 조건은 특별히 광택이 나는 완성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나 표면이 특수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에도 적용한다.

코팅(coating)용 물품은 대개 경화제와 분산제와 같이 코팅작업에 필요한 광물성·결합제·그 밖의 첨가제로 구성한다.

특수 치수의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카본지(carbon paper)·셀프(self) 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는 제4809호에 해당된다.

고령토(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로 도포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와 판지(결합제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는 제4810호에 해당된다. 고령토(kaolin) 이외에 코팅(coating)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물질에는 황산바륨(barium sulphate)·탄산칼슘(calcium carbonate)·황산칼슘(calcium sulphate)·마그네슘 실리케이트(magnesium silicate)·산화아연·금속 가루를 포함한다. 이러한 코팅 재료들을 일반적으로 글루(glue)·젤라틴(gelatin)·녹말물질[예: 전분·덱스트린(dextrin)]·셀락(shellac)·알부민(albumin)·합성라텍스(synthetic latex)와 같은 결합제로 붙여진다. 뚜렷하거나 옅은 광택이나 무광택으로 완성가공하기 위하여 고령토(kaolin) 등으로 물품을 도포한다. 고령토나 그 밖의 무기물질로 도포한 물품의 예로는 도포한 인쇄용 종이와 판지[도포한 아트지(art paper)나 다색인쇄용지를 포함한다], 접게 되어 있는 도포한 카튼스톡(carton stock), 금속 가루[제3212호의 스탬프용박(stamping foil)을 제외한다]이나 운모가루로 도포한 종이, 에나멜지(enamel paper)[주로 레이블(label)용과 포장 상자용으로 사용하는]가 있다. 도포의 정착용으로 사용하는 글루(glue)나 전분 등의 결합제는 표면을 사이즈(size) 가공하는데도 사용하지만 도포되지 않은 사이즈(size) 가공된 종이의 경우에는 도포용 안료가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해당 호에 설명한 예외규정에 따라 타르(tar), 역청물(bitumen), 아스팔트(asphalt), 플라스틱, 그 밖의 유기 물질[왁스(wax)·스테아린(stearin)·شم유디스트·톱밥·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셀락(shellac) 등]을 도포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 이들 도포용 재료는 도포용으로 사용하는데 결합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도포는 예를 들면, 방수포장, 이형지와 판지의 광범위한 최종용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위와 같이 도포한 종이와 판지는 접착지, 라사지[방직용 더스트(dust)를 도포한 것으로서 상자포장용이나 벽지용으로 사용한다], 코르크(cork)입자를 붙인 종이(포장재료로 사용한다), 흑연지, 타르(tar)칠한 포장지를 포함한다.

착색제(colouring material)도 역시 도포물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도포된 종이와 판지는 슈퍼캘린더(supercalender) 가공에 의하여 고도의 광택을 갖게 되며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니시(vernish)를 칠하는 경우도 있다(예: 세탁 가능한 종이의 경우).

표면 가공(surface sizing)과 표면 도포(surface coating)와의 구별은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의 결합사용으로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해당 재료의 성질과 수량을 기초로 하거나 전체적인 물리적 특성을 기초로 하면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포한 종이와 판지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자연 그대로의 표면이 도포용 재료의 사용으로 상당히 제거하는데 반하여 표면 사이즈(size) 가공의 경우에는 종이나 판지의 표면이 자연 그대로의 외관과 조직을 유지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도포를 얇게 한 종이(low coated paper)는 사이즈 프레스(size press) 장치에서 도포처리를 하기도 하며 ; 도포재료에 있는 특정의 물질은 종이 자체에서도 존재하는데(예: 충전제) ; 예를 들면, 폴리(poly)[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의 수성 분산액 등의 안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재료를 도포한 종이의 경우에 있어서 섬유가 눈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래에서 제시한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 취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광물성 물질을 도포한 아트인쇄용지(mineral-coated art printing paper)와 같은 많은 도포지는 정밀히 가공된 비도포 종이와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포층은 때로는 표면을 긁으면서 식별할 수 있으며 물에 담그면 도포층이 제거된다.

도포(특히 무기물질로)한 종이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종이를 접착 테이프(adhesive tape)에 붙여보는 것이다. 테이프(tape)의 꺾질을 벗겼을 경우 대부분의 도포된 종이는 테이프에 달라붙는다. 이때 테이프에 나타난 펄프 섬유와 전분(전분의 종류에는 상관없다)을 쿠프리에틸렌다이아민(cupriethylene diamine)으로 용해할 필요가 있다. 코팅(coating)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이와 같은 작업 전후의 테이프의 중량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유기 물질로 도포된 종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종이와 판지가 도포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그 밖의 방법 중에는 주사전자현미경법(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레이 회절법과 적외선 분광광도 측정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제4810호와 제4811호의7 제품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착색이나 인쇄한 종이와 판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색, 줄무늬, 모티프(motif), 디자인(design) 등을 여러 가지 공정에서 인쇄한 종이와 표면에 대리석 모양을 넣은 종이와 자스페지(jaspé paper)를 포함한다. 이러한 종이는 상자포장용지, 제본용 등의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종이는 여러 가지 색의 잉크(ink)로 선(평행선, 한 점으로 보이는 선, 각도의 선)을 표면인쇄한 것도 있다. 이 물품은 특히 회계부·부기장·연습장·제도장·수서용음악장·필기용지·도표용지·노트(note)에 사용한다.

인쇄한 종이(즉, 상호·상표·무늬·상품의 용법을 인쇄한 각각의 상업용 포장용지)로서 그 인쇄가 포장용, 필기용 등의 용도에 부수적이고 그 물품이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경우에 한정해서 이 류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2호 참조).

침투한 종이와 판지

이러한 종이와 판지의 대부분은 기름·왁스(wax)·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종이와 판지가 일정한 특성(예: 방수성·내지성·반투명성·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 포장지와 전기 절연지로 사용한다.

침투한 종이와 판지에는 포장용 유지·기름·왁스를 침투한 복사지·등사용 원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킨 절연용지와 판지, 고무 가공한 종이, 단순히 타르(tar)나 역청물을 침투한 종이를 포함한다.

벽지(wall paper)와 같은 특정의 종이는 살충제나 화학약품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
* *

이 류에는 건조하면 분리되기 때문에 습한 상태에서 롤(roll) 모양으로 감아야 하는, 성긴 상태의 펠트(felt)화된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수많은 아주 얇은 층(층의 수가 변화하는)으로 이루어진 **셀룰로오스 워딩(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도 포함한다.

이 류의 범위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여러 가지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

(A) 제4801호, 제4802호, 제4804호와 제4805호에는 기계제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즈(size) 가공과 단순한 완성가공[예: 캘린더(calender)가공·글레이즈(glaze)가공]을 한 것도 분류한다. 제4802호에는 도포하지 않은 수제의 종이를 분류하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제4803호에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하며 해당 호에 명시된 공정을 거친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 해당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이 거치는 공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 해당하는 공정은 연속 제지작업 공정의 일부로서 행해진다. 이들 호에 해당하는 종이의 특성은 표면이 자연 그대로의 외관과 조직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포한 종이의 경우에는 불균질한 자연적인 표면이 도포재료의 사용으로 상당히 제거하여 새롭고 우수한 비셀룰로오스(non-cellulose)의 표면을 형성한다.

(B) 제4806호부터 제4811호까지 밑에 종이·판지를 깎 바닥 덮개[예: 황산지·내지지(耐脂紙: grease proof)·접붙인 종이]·도포·디자인(design) 인쇄·패션(ruling)·침투(impregnation)·물결 무늬 넣기(corrugation)·축유(creping)·부조(embossing)·천공(穿孔: perforation) 등의 종류의 처리를 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를 분류한다.

제4811호에는 또한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특정의 바닥깔개를 포함한다.

*
* *

그 밖의 다른 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이나 판지가 앞에서 설명한 호 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호 중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제10부
제48류

제4801호와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에 열거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폭이 36cm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이나 롤(roll) 모양의 것
- (2)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변의 길이가 36cm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cm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반면 제4802호, 제4810호와 제4811호는 크기에 상관없이 롤(roll) 모양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 모양의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만든 모양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가 절단되지 않은 수제의 종이와 판지(크기나 모양에 상관없다)는 이 류의 주 제7호에 따라 제4802호에 분류한다.

- (II) 제지용 펄프(pulp)제의 필터블록(filter block)·필터슬래브(filter slab)·필터플레이트(filter plate)(제4812호), 켈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tube) 모양의 것 인지에 상관없다](제4813호),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이 류의 주 제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와 창용 투명지(제4814호)
- (III) 앞에서 설명한 (I)에 규정한 크기 이하의 크기로 절단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 모양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그러나 제4802호, 제4810호와 제4811호나 앞에서 설명한 (II)에 해당하는 종류는 제외한다)·제지용 펄프(pulp)·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제품. 이들은 제4816호부터 제4823호까지 중 하나나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

제4812호, 제4818호, 제4822호, 제4823호와 이와 관련된 해설에서 “제지용 펄프(paper pulp)”란 제4701호부터 제4706호까지의 모든 물품, 즉 목재나 그 밖의 섬유 셀룰로오스(cellulose) 원료의 펄프(pulp)를 말한다.

다만, 이 류에는 이 류의 주 제2호와 제12호에서 **제외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48.01 -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신문용지(newsprint)”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으로 얻은 목재섬유(wood fibre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란 주로 원료에 가해지는 기계힘에 의해 섬유질화 되는 여러 가지의 펄프(pulp) 제조 기술로 얻어지는 섬유를 말한다. 이들 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펄프 모양으로 생산한다.

- (1) **기계 펄프(mechanical pulp)** : 예를 들면, 리파이너기계펄프(RMP : refiner mechanical pulp)와 열기계펄프(TMP : thermo-mechanical pulp) 등과 같이 리파이너기(refiner)는 펄프(pulp)와 스톤쇄목펄프(SGW : stone groundwood)와 공기가압식 스톤쇄목펄프(PGW : pressurised stone groundwood)를 포함한다.
- (2) **화학-기계펄프(chemical-mechanical pulp)** : 리파이너기로도 생산되는 펄프로서 생산 이전에 **소량의** 약품으로 처리한다. 이들 펄프에는 화학-열기계펄프(CTMP : chemi-thermomechanical pulp) · 화학-리파이너 기계펄프(CRMP : chemi-refiner mechanical pulp)와 열화학-기계펄프(TCMP : thermo chemi-mechanical pulp)를 포함한다. 다만,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중성아황산 반-화학펄프(NSSC : neutral sulphite semi-chemical) · 산성아황산 반-화학펄프(bisulphite semi-chemical pulp)와 크라프트 반-화학펄프(kraft semi-chemical pulp)로 알려져 있는 반-화학펄프(semi-chemical pulp)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 펄프 생산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4701호와 제4705호의 해설을 참조한다.

이 규정의 “목재섬유(wood fibre)”에는 대나무섬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신문용지(newsprint)에는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다만, 그 밖의 별도의 공정을 거친 신문용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48.02 -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手製) 종이와 판지(+)

4802.10 - 수제(手製) 종이와 판지

4802.20 -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4802.40 - 벽지용 원지(原紙)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4802.55 -- 롤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4802.56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이하인 것

4802.57 -- 그 밖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4802.58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 롤 모양인 것

4802.62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4802.69 -- 기타

이 호의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천공하지 않은 펀치카드(punch-card)와 펀치테이프지(punch tape paper)는 이 류의 주 제5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종이와 판지는 항상 이 호에 분류한다.

만든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않은 수제(手製) 종이와 수제판지(크기나 모양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는 이 류의 주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수제(手製) 종이와 수제판지(가장자리를 재단하거나 절단한 것)과 기계 종이와 판지는 스트립(strip)이나 롤(roll) 모양 혹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이 그 밖의 모양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제4817호·제4821호·제4823호**).

이 호의 종지와 판지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전체적으로 착색이나 대리석 모양의 가공·캘린더 가공·슈퍼캘린더(supercalender)가공·광택가공·거짓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이나 표면 사이징(sizing)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이 이외의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지와 판지는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제4806호부터 제4811호까지**).

수제(手製) 종지와 수제판지와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예를 들면, 종지와 판지의 원지

- (1) 사진 감광성용·열감응성용·전자감광성용의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나 판지 ;
- (2) 일 회 전환용 카본(carbon) 원지[용도에 따라 제곱미터(m²)당 무게가 9~70g인 얇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이나 그 밖의 카본(carbon)지 ;
- (3) 벽지용 원지 ;
- (4) 제4810호의 고령토(kaolin)로 도포한 종이·판지 전환용 종이·판지의 원지

(B) 그 밖의 종지나 판지(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면 :

- (1) 잡지용지와 서적 인쇄용지(얇고 부피가 큰 인쇄용지를 포함한다) ;
- (2) 오프셋(offset) 인쇄용지 ;
- (3) 인쇄용 브리스톨(bristol) 판지·색인용 원지·포스트카드 스톡(postcard stock)·태그스톡(tag stock)·표지용지 ;
- (4) 포스터(poster)용지·도화지·학습장용지·노트북용지·writing tablet·학교용지 ;
- (5) 본드지(bond paper)·복사지·등사판 원지용지·타이프(type)용지·반투명 광택이 나는 얇은 종이·사무실·개인문구용 복사용지·그 밖의 용지[프린터(printer)나 사진복사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용지를 포함한다] ;
- (6) 장부용지·계산기 롤지(adding machine roll paper) ;
- (7) 봉투용지와 폴더용 종이 ;
- (8) 등록용지·기록용지·서류 양식용 본드 종이·연속 종이 ;
- (9) 수표·우표·지폐·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증권용지

(C)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punch-card)와 펀치테이프지(punch tape paper)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신문용지(**제4801호**)
- (b) **제4803호**의 종이
- (c) 여과지와 여과 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펠트(felt)지와 펠트 판지(**제4805호**)
- (d) 켈련용지(**제4813호**)



[소호해설]

소호 제4802.20호

이 류의 주 제5호 규정에 따라 사진감광성의 종이·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판지는 일반적으로 래그펄프(rag pulp)로 만든 종이·판지·래그펄프를 함유한 상급 종이·판지로서 이물질(특히 철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48.03 - 화장지 · 안면용 티슈 원지, 타월 · 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울룩볼룩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 범주의 물품을 분류한다.

- (1)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화장지 · 안면용 티슈용 원지(tissue stock) · 타월(towel) · 냅킨용 원지(napkin stock) ·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 종이로서 폭이 36cm 이하나 이 류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과 이러한 종류의 종이로 만든 가정용이나 위생용 제품은 **제4818호**에 분류한다.
- (2)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cm 이하나 이 류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오스워딩 제품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제품은 **제4818호 · 제4819호 · 제4823호**에 분류한다.

셀룰로오스워딩은 구조가 개방된 축유한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축유의 비율이 35%를 초과하고, 하나 이상의 겹을 가지고 있으며 축유하기 전의 각 겹의 중량이 20g/m²(기본중량)인 것이다.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티슈(tissue)]은 구조가 밀폐된 축유한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축유의 비율이 최고 35%이고 하나 이상의 겹을 가지며 축유하기 전의 각 겹의 중량이 20g/m²(기본중량)인 것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공정을 거치는 것 이외에 주름지게 가공(creped) · 부조 · 울룩볼룩하게 가공(embossed) · 표면착색 · 표면장식 · 인쇄처리를 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의약품을 침투 · 도포하였거나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한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제3005호**)
- (b) 비누나 세제를 침투 · 도포 · 피복한 종지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이거나 광택제 · 크림(cream)이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 · 도포 · 피복한 종지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 (c) 압지(押紙 : blotting paper)(**제4805호**)

48.04 -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 -- 표백하지 않은 것

4804.19 -- 기타

-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 -- 표백하지 않은 것

4804.29 -- 기타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 -- 표백하지 않은 것

4804.39 -- 기타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41 -- 표백하지 않은 것

4804.4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4804.49 -- 기타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51 -- 표백하지 않은 것

4804.5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4804.59 -- 기타

“크라프트지(kraft paper)와 크라프트판지(kraft paperboard)”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크라프트지와 크라프트판지 중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의 것은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자루용 크라프트지(kraft paper)와 포장용의 그 밖의 크라프트지이다.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자루용 크라프트지(sack kraft paper)”에 대해서는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와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크라프트라이너에 대한 규정에서 정의한 “목재의 섬유(wood fibre)”에는 대나무의 섬유는 **제외한다**].

제10부
48.04

크라프트지와 크라프트 판지는 폭이 36cm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roll) 모양의 것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cm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cm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정해서만 이 호에 분류하며(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그 밖의 다른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경우에는 대개 제4823호에 해당한다.

이 호의 종지와 판지는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전체적으로 착색·대리석 모양의 가공·캘린더(calender)·슈퍼캘린더(super-calender)가공·광택가공·표면사이징(sizing)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이밖에 별도의 가공을 받은 종지와 판지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07호·제4808호·제4810호·제4811호).

48.05 -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플루팅지(fluting paper)
- 4805.11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 4805.12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 4805.19 -- 기타
 -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 4805.2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 4805.25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 4805.30 - 아황산포장지
- 4805.40 - 여과지와 판지
- 4805.50 - 펄트지와 판지
 - 기타
- 4805.9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 4805.9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 4805.9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제조된 기계제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제4801호부터 제4804호까지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8호의 치수에 관한 규정 참조). 다만, 특수지와 판지나 특수제품(제4806호부터 제4808호까지와 제4812호부터 제4816호까지)과 예를 들면, 도포·침투한 종이나 판지 등 주 제3호에 규정한 공정을 제외한 공정을 거친 종이와 판지(제4809호부터 제4811호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 해당하는 종지와 판지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반화학플루팅지(semi-chemical fluting paper)(이 류 소호 주 제3호에 규정한 것)
- (2) 다층(multi-ply) 종지와 판지 : 이들은 2층 이상의 젖은 펄프(pulp)를 함께 압축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적어도 이들 층 중 한 층은 특성이 다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특성은 사용한 펄프의 성질[예: 재활용 웨이스트(recycled waste)]·생산방법(예: 기계적이나 화학적 방법)·성질과 생산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공정의 차이(예: 표백하지 않은 것·표백한 것·착색한 것)에 의하여 생긴다.
- (3) 아황산 포장지(이 류 소호 주 제6호에 규정한)(이 정의에서의 “목재의 섬유(wood fibres)”에는 대나무의 섬유는 제외한다)
- (4) 여과지와 여과 판지[티백(tea-bag)지를 포함한다]

(5) 펠트지와 펠트 판지

(6) 압지(押紙 : blotting paper)

또한 이 호에는 섬유판(fibreboard)도 **제외한다(제4411호)**.



[소호해설]

소호 제4805.19호

소호 제4805.19호에 포함되는 “웰렌스토프(Wellenstoff) 플루팅 지(fluting paper)(재생 중간물)”는 주로 재생펄프(pulp of recovered paper or paperboard)에 첨가제(예: 전분)를 넣어 제조한 롤(roll) 모양의 종지와 판지로서, 중량이 100g/m² 이상으로서 씨엠티(CMT)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골심지 시험(corrugated medium test)]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50%, 온도 섭씨 23도에서 1.6뉴턴/g/m²을 초과하는 롤(roll) 모양의 종지를 말한다.

소호 제4805.40호

여과지와 여과 판지는 기계공정이나 반화학공정에 의한 목재섬유가 없는 다공성(多孔性)의 물품으로서 액체나 기체로부터 고체 파티클(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사이즈(size)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은 래그(rag)나 화학펄프로 제조되거나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만들며 합성섬유나 유리섬유를 함유하기도 한다. 구멍의 크기는 제거되는 파티클(particle)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여과지와 여과 판지에는 티백(tea bag)·커피필터(coffee filter)·자동차용 필터(filter) 제조용 여과지와 여과 판지와 산성(acidic)이거나 알칼리(alkaline)성도 아니면서 회 함유량이 매우 낮은 분석용 여과지와 여과 판지도 포함한다.

소호 제4805.50호

펠트(felt)지와 펠트 판지는 흡수도가 각기 다른 섬유덩어리로 만들어지는 물품이다. 펠트(felt)지·펠트 판지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종이나 판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섬유형태의 목재펄프나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가 있다. 펠트지와 펠트 판지는 대체로 흐린 청회색이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섬유 형태로 되어 있으며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루핑(roofing)용 판지의 제조와 케이스와 장식용 가죽제품의 중간층으로 사용한다.

48.06 - 황산지 · 내지지(耐脂紙)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 - 황산지

4806.20 - 내지지(耐脂紙)

4806.3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806.4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황산지(vegetable parchment) : 사이즈(size)가공이나 로드(load)가공을 하지 않은 양질의 종이를 황산액에 몇초 동안 담가 놓음으로써 만들어진다. 산(酸)의 처리를 함으로써 셀룰로오스(cellulose)의 일부가 변형되어 아교질과 불삼투성을 가진 전분질로 전환된다. 이 처리를 한 종이를 완전히 세척하고 건조시키면 원래의 종이보다 강도가 큰 물품이 생산되며 이 물품은 투명하고 기름·그리스(grease)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물과 가스(gas)가 스며들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중량이 무겁고 견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황산지와 두 배 이상의 황산지를 습한 상태에서 압축하여 만든 물품을 황산지판지(vegetable parchment paperboard)라 한다.

이와 동일한 방법[펄프(pulp)에다 산화티타늄(titanium oxide)을 첨가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이와 유사한 종이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여 만든 종이는 여전히 황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황산지는 지방질의 물질[예: 버터(butter)와 라드(lard)]와 그 밖의 식료품·다이내마이트(dynamite) 보호 포장지·삼투나 투석 처리용 막·면허장 등의 용지·특수 목적을 위한 트레이싱지(tracing paper)와 설계지·연하장용 카드(card)의 제조에 사용한다. 황산지의 판지는 책의 표지·전등갓·여행용구 등에 사용한다.

한쪽 면에만 황산주입가공을 한 것(특정 형태의 벽지제조용으로 사용한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내지지(耐脂紙 : greaseproof paper)[어떤 나라에서는 “모조황산지(imitation parchment paper)”라 한다] : 펄프(보통 아황산펄프)를 직접 물 속에서 오랫동안 휘저어 섬유를 곱게 세분한 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다. 이 종이는 반투명하고 기름과 그리스(grease)에 대하여 상당한 불침투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황산지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값이 싸기 때문에 특히 지방질 있는 물품의 포장용으로 적합하다. 이것은 거의 광택이 나지 않으며 황산지와 외양이 비슷하지만 물에 대하여 저항성이 약하다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황산지와 내지지(耐脂紙)는 표면의 완성가공 중에 글리세롤(glycerol)·글루코오스(glucose) 등을 사용하여 좀 더 부드럽고 반투명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처리는 이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지지(耐脂紙)는 시험해 보면 물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는 점으로 황산지와 구별될 수 있다. 황산지를 수분간 물에 담그어도 잘 찢어지지 않고 또한 절단면이 선명하지만 내지지(耐脂紙)는 이렇게 처리하면 섬유상으로 분별되어 쉽게 찢어진다.

내지성(耐脂性)을 가지고 있는 유사품(**모조내지지 : imitation greaseproof paper**)으로서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은 펄프를 휘젓는 처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완전하게 섬유를 가수분해 하지 않고 제조한 것이다. 투명성과 산뜻한 외관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파라핀 왁스(paraffin wax)나 스테아린(stearin)을 펄프에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 내지지(耐脂紙)와 유사한 것으로서, 고도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펄프를 오랫동안 휘젓는 처리를 하여 제조한다. 또한 이 호에는 그 밖의 다른 종류의 트레이싱지도 분류한다.

투명광택지(glazed transparent paper)인 글라신지(glassine paper) : 내지지(耐脂紙)와 동일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나 마지막 제조단계에서 슈퍼캘린더(supercalender)의 가열된 롤러(roller) 사이에 끼워 압력을 가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로 축이고 광택가공을 하여 투명하고 고밀도의 마감 특성을 얻게 된다. 이와 유사한 투명광택지도 같은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물질을 펄프에 첨가하여서 제조한다.

투명광택지·반투명광택지(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s)는 주로 무색이나 펄프 단계에서 착색제를 첨가하여 여러 가지의 착색된 물품(투명광택지)이 생산되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황산지나 내지지(耐脂紙) 보다 침투성이 약하나 식료품·과자 등의 보호용 포장지로 사용하며 봉투의 창 제조용과 조각조각으로 절단하여 초콜릿 등을 포장하는 우수한 포장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의 제품의 치수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8호의 규정을 참조할 것

*
* *

이 호에는 제조한 종이에다 도포·침투·그 밖의 가공을 하여 내지성(耐脂性)과 내수성(耐水性)을 부여한 종이는 **제외한다(제4809호와 제4811호)**.

48.07 -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 없다]

이 호에는 두 매 이상의 종이와 판지의 층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겹붙인 종이와 판지를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어떠한 품질의 종이와 판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며 접착제로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 물질[예: 덱스트린(dextrin)·아교·타르(tar)·검(gum)·아스팔트(asphalt)·라텍스(latex)]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물이나 그 밖의 적당한 용제(solvent) 속에 넣으면 각층이 쉽게 분리되어 접착제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앞 호에 물품(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층을 압축하여 적층된 물품)과는 구별된다. 겹붙인 종이와 판지는 가열시키면 대개 분리된다.

접착제로 사용한 물품이 방수성의 역할도 하는 겹붙인 종이와 판지(예: tarred duo-kraft)도 이 호에 분류하며 내면을 역청물·타르(tar)·아스팔트(asphalt)·직물·그 밖의 재료(예: 직물이나 금속의 거즈·플라스틱)로 보강한 종이와 판지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종이나 판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종이와 판지는 주로 방수용의 포장재료로 사용한다.

적층된 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양질의 겹붙인 종이와 판지는 인쇄와 문구류 용도로 사용한다. 그 밖의 것은 상자의 제조용과 제분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의 물품의 치수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섬유판(fibreboard)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11호)**.

48.08 -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울룩불룩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지와 판지[를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 - 물결 모양의 종지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4808.4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룩불룩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808.90 - 기타

이 호에는 평면이나 균일한 표면을 가지지 않도록 제조 중이나 제조 후에 특수 가공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여러 가지의 종지와 판지를 분류한다(이 호의 물품의 치수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8호를 참고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물결 모양으로 한(corrugated) 종지와 판지

물결 모양으로 한 종지와 판지는 홈이 패인 롤러(roller)를 통과하는 재료를 열과 수증기를 이용 가공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것은 한 매의 물결 모양으로 한 종지로 되어 있거나 한 면이나 양면 위에 평면지를 결합한 것이 있다. 좀 무거운 판지는 물결 모양으로 한 종지나 판지와 평면지를 교대로 계속하여 접합함으로써 제조된다.

물결 모양으로 한 종지와 판지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용도로서는 물결 모양 용기의 제조이며 또한 보호용 포장재료로도 사용한다.

(2) 주름진(creped) 종지 · 구겨진(crinkled) 종지

이것은 웹(web) 모양의 종지를 습한 상태에서 기계적 처리를 하거나 제조된 종지를 주름이 있는 롤러(roller) 사이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제조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최초의 종지의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며 신축성이 풍부한 주름이 진 외양을 갖게 된다.

보통 주름진 외모를 갖고 있는 셀룰로오스위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은 주름진 종지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4803호·제4818호·제4823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클루팩(clupak)공정으로 제조되는 잡아 늘릴 수 있는 종이(extensible paper)도 제외하는데 이 클루팩(clupak) 공정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종지의 웹(web)을 습곡하고 압축시키는 공정이다. 잡아 늘릴 수 있는 종지는 웹(web)을 습한 상태에서 기계적인 처리를 하여 만들며 또한 탄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주름이 있는 주름진 종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804호와 제4805호).

주름진 종지는 때때로 착색되며 한점이나 중합하여 여러 가지 물품 제조에 사용한다[예: 시멘트(cement)대와 그 밖의 포장용지·장식적인 색 테이프(tape)]. 다만, 이러한 종지도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일 경우에는 제외한다(제4803호). 또한 이러한 종류의 종지로 만든 제4818호에 열거된 물품도 제외한다.

(3) **울룩볼룩한(embossed) 종지와 판지**

울룩볼룩한 종지와 판지는 제지 후에 젖은 상태나 건조 상태에서 무늬가 새겨진 롤러(roller) 사이를 통과시키거나 무늬가 새겨진 금속판으로 압축함으로써 표면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하지 않은 상태의 종지와 판지이다. 이러한 물품은 품질과 외관이 상당히 다채로운 상태이며 보통 고퍼드지(goffered paper)로 알려진 종이·여러 가지 가죽의 표면을 모조한 무늬를 새긴지·리넨으로 완성가공한 종이[포로 싸인 롤러(roller)에 의해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필기용지·벽지·상자의 내외장용·제본용 등으로 사용한다.

(4)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지와 판지**

이것은 건조 상태에서 종지나 판지에 다이(die)로 기계적인 구멍을 뚫어 제조한다. 구멍은 의도된 모양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일정 간격을 둔 것일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데 편리하도록 일렬로 구멍을 뚫은 종지도 포함한다.

구멍을 뚫은 종지는 장식용지(예: shelf지와 border지)로의 전환과 포장용지 등에 사용한다.

제4803호와 제4818호의 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 (a) 자연적으로 종이결이 용기된 종이. 예: 도화지(**제4802호**나 **제4805호**)
- (b) 자카드직기(Jacquard machine)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용에 사용하는 구멍을 뚫은 종지와 판지, 종이 레이스(paper lace)(**제4823호**)
- (c) 구멍을 뚫은 종지와 판지제의 뮤직 카드(music card)·디스크(disc)와 롤(roll)(**제9209호**)

48.09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 - 셀프복사지

4809.90 - 기타

이 호에는 도포·침투·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한 롤(roll) 모양·시트(sheet) 모양의 종이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에 대한 수치는 이 류의 주 제8호를 참조할 것. 이들 종이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816호**에 분류한다(이들 종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4816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스탬프 용박(stamping foil)(**제3212호**)
- (b) 감광지(sensitised paper)(일반적으로 **제3703호**)

48.10 -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 롤 모양인 것

4810.14 --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4810.19 -- 기타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810.29 -- 기타

-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3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39 -- 기타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 -- 여러 겹의 것

4810.99 -- 기타

흔히 도포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물질[고령토(kaolin : 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를 제외한다)에는 황산바륨(barium sulphate)·규산마그네슘(magnesium silicate)·탄산칼슘(calcium carbonate)·황산칼슘(calcium sulphate)·산화아연·금속가루(이 류의 총설의 도포한 종이와 판지 참조)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무기 도포 재료에는 종이 표면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보기로서 소량의 유기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제10부
48.10

이 호에는 프린터나 사진복사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용지를 포함한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이 범주에 속하는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에 대해서는 소호주 제7호에 규정하고 있고; “목질 섬유(wood fibre)”에는 대나무섬유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종이나 판지·크라프트지(kraft paper)와 판지·다층지와 판지를 분류하는데(제4805호의 해설에서 설명), 다만, 이들의 종이가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로 도포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이나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제4817호·제4821호·제4823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향기가 나는 종이나 화장품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
- (b)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지와 감광판지
- (c)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이 침투된 스트립(strip)(**제3822호**)
- (d) **제4809호**나 **제4816호**에 해당하는 복사지
- (e)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피복재와 창용 투명지(**제4814호**)
- (f) **제4817호**의 통신용 카드(card)와 문구용의 그 밖의 종이나 판지
- (g) 연마지나 연마 판지(**제6805호**)와 종이나 판지의 지지물에 부착한 운모(운모 가루를 제외한다)(**제6814호**)
- (h) 종이나 판지를 이면재로 한 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소호해설]

소호 제4810.13호·4810.14호·제4810.19호·제4810.22호와 제4810.29호

이들 소호에 분류하는 종이나 판지는 도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802호에 해당된다.

소호 제4810.92호

여러 겹의 종이나 판지에 대해서는 제4805호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다.

48.11 -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 접착지와 판지

4811.41 -- 셀프접착지

4811.49 -- 기타

-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 --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1.59 -- 기타

4811.60 -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811.9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 호에 분류한다(예: **제4823호**). 이러한 조건과 호와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다음의 종이와 판지에 적용한다.

- (A) 일면이나 양면에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 이외의 표면 도포제를 도포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예: 텔레팩스(telefax)지에 사용하는 감열성 종이]
- (B) 침투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총설의 「침투한 종이와 판지」 참조)
-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 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포장 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막(metal foil)을 입혔는지에 상관 없다. 이들 물품은 롤(roll)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과 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
- (D) 표면을 단색이나 다색으로 착색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 [대리석의 모양을 넣은 종이, 디자인(design)을 인쇄한 종이를 포함한다]·이들을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인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으로 인쇄한 것으로서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것(이 류의 주 제12호와 총설의 「착색이나 인쇄한 종이와 판지」 참조)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의약품질 등을 침투·도포한 **제3005호**의 셀룰로오스워딩
- (b) 향기가 나는 종이나 화장품을 침투·도포한 종이(**제33류**)
- (c) 비누나 세제를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 광택제·크림(cream)·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 (d)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지나 감광 판지
- (e) 리트머스(litmus) 시험지와 폴파인딩(pole-finding)지와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을 침투시킨 그 밖의 종이(**제3822호**)
- (f) 플라스틱층을 도포·피복한 종이·판지의 층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제39류**)
- (g) 선(line) 등으로 단순히 워터마크(watermark) 무늬를 한 종이(그 선이 인쇄한 선의 목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도 상관없다)(**제4802호·제4804호·제4805호**)
- (h)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제4814호**)
- (ij) **제4817호**의 통신용 카드와 문구용의 그 밖의 종이나 판지
- (k) 아스팔트(asphalt)·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판지의 지판을 완전히 덮었거나 해당 지판의 양면을 피복한 지붕용 판지(**제6807호**)

48.12 -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이 물품은 셀룰로오스(cellulose)의 함유량이 많은 식물성 섬유(면·아마·목재 등)를 다른 결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하여 블록(block) 모양·슬래브(slab)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으로 만든 물품이며 여기에서의 섬유는 영성하게 부착한 상태로 되어 있다.

식물성 섬유에 석면 섬유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 이 경우의 블록·슬래브·플레이트는 제지용 펄프 물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블록·슬래브·플레이트로 제조되기 전에 섬유질을 제지용 펄프의 농도로 되도록 만들며 필요한 목적에 따라 여과할 때 색·냄새·맛의 원인이 되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다.

필터블록(filter block)은 조제되고 정제된 펄프에서(때때로 손으로) 만든 슬래브(slab)를 두 개 이상 압축하여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필터블록[필터매스(filter mass)로도 알려져 있다]은 액체(예: 와인·주정·맥주와 식초)를 정화하기 위하여 여과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크거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시트(sheet)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단순히 압축한 면(綿)린터(cotton linter)(**제 1404호**)
- (b) 액체 여과용으로 사용하는 그 밖의 종이 제품, 예를 들면, 여과지(**제 4805호**나 **제 4823호**)와 셀룰로오스 워딩(cellulose wadding)(**제 4803호**나 **제 4823호**)

48.13 - 켈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1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4813.2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813.90 - 기타

이 호에는 크기나 외양을 불문한 여러 가지의 모든 켈련지[필터매스(filter mass)를 쓰는데 사용하는 plug wrap과 필터-팁(filter-tip)과 담배를 조립하는데 사용하는 티핑페이퍼(tipping paper)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아래 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 (1) 한 개의 켈련 제조에 충분한 크기의 엽상의 것이나 소책자상의 것(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은 담배를 손으로 말기 위한 것이다.
- (2) 한 개의 켈련제조에 적합한 크기의 튜브(tube) 모양의 것
- (3) 담배 제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대개 폭이 5cm 이하의 것)로 절단한 롤(roll) 모양의 것
- (4) 폭이 5cm를 초과하는 롤(roll) 모양의 것

이러한 물품은 좋은 품질[마·아마의 래그펄프(rag pulp)]의 종이이며 칠하거나 줄무늬를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얇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다. 이것에는 보통 다른 물질을 부착시키지 않거나 특수 물질을 약간 충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백색에서 만들어지나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때때로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우드 크레오소트(wood creosote)·감초와 같은 물질로 침투되어 있다.

켈련지는 한 끝에 왁스(wax)·금속안료·그 밖의 비흡습성의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도 있으며 튜브(tube) 모양의 종이에 한 끝에 코르크(cork)·짚·견(silk) 등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며 튜브(tube) 모양의 종이는 필터(filter)[일반적으로 흡습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초산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acetate fibre)로 만든 소형 플러그(plug)로 되어 있다]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끝이 중량지로서 보강된 경우도 있다.

48.14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4.2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814.90 - 기타

(A)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이 류의 주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wallpaper and similar wall covering)”에는 다음의 물품만을 적용한다.

(a) 폭이 45cm 이상 160cm 이하이며,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롤(roll) 모양의 종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design) 인쇄한 것, 그 밖의 표면장식을 한 것[섬유플록(textile flock) 등으로][세척이나 심지어는 비벼 빨 수 있도록 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을 도포·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벽지(wallpaper)”로 알려져 있다.

“린크러스터(lincrusta)”도 이 그룹에 속한다. 이것은 산화된 아마씨유와 충전물로 이루어진 건조혼합물을 도포한 무거운 종이로 된 것이다. 도포가공은 벽이나 천장의 장식용에 적합하도록 울록볼록하게 하거나 표면장식을 한다.

(2) 제조과정 중 목재의 파티클(particle)·짚 등을 부착함으로써 평탄하지 않은 표면을 가진 것. 이러한 벽지는 흔히 “인그레인지(ingrain paper)”로 알려져 있으며 표면장식[예: 페인트(paint)한 것]을 하였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들이다. 장식이 없는 인그레인지(ingrain paper)는 보통 벽에 건 다음에 페인트칠을 한다.

(3) 정면 쪽을 플라스틱(plastic)으로 도포·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장식이 된 것. 이들 벽지는 세탁이 가능하며 앞에서 설명한 (i)의 것보다 더 내구적이다. 폴리(poly)[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층을 가진 물품은 가끔 “비닐 벽 피복재(vinyl wall covering)”나 “비닐벽지(vinyl wallpaper)”라고 부른다.

(4) 정면 쪽을 조물 재료(이들은 서로 평행하게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전부나 일부분 피복한 것. 이들 벽 피복재 중 일부는 조물 재료의 층이 방직한 방직용 섬유로 묶여져 있다.

(b) 좁은 스트립(strip) 모양의 종이인 보더(border)와 프리즈(frieze)로서 앞에서 설명한 처리 [예: 울록볼록하게 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건섬유(drying oil)와 충전물의 혼합물로 표면장식한 것·플라스틱(plastic)을 도포·피복한 것]를 한 것[롤(roll)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벽이나 천장장식용의 것에 한정한다]

(c) 여러 매의 패널(panel) 판지로 된 벽 피복재. 벽에 붙일 경우 경치·디자인(design)·모티프(motif)를 나타내도록 패널(panel) 판지에 인쇄되어 있다(벽면사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패널(panel)은 치수에는 상관없으며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

(B) 창용 투명지(window transparency of paper)

이 물품은 얇고 단단하며 고도의 반투명 광택이 나거나 투명한 종이로 만들어진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의 장식용 디자인(design)이 인쇄되며 때로는 색유리를 모방하여 착색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장식용의 목적이거나 단순히 창유리의 투명성을 적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들 물품에는 예를 들어 광고나 전시목적으로 문자나 삽화가 인쇄한 것도 있다.

이것은 롤(roll)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창유리나 문유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크기와 모양을 미리 맞춰 놓은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보호용 종이층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시트(sheet)만으로 만든 접착성 벽 피복재로서 사용할 때 종이층을 제거하는 것(**제39류**)
- (b) 베니어(veneer)나 코르크(cork)로 만든 벽 피복재로서 종이를 뒷면에 붙인 것(**제4408호·제4502호·제4504호**)
- (c) 예를 들면, 판지[보통보다 넓은 롤(roll) 모양으로 제시하는 것(예: 183cm)]를 기본 재료로 한 층은 플라스틱으로 된 물품으로서 벽 피복재와 유사하나 벽 피복재보다 더 무겁고 구조가 더 단단하며, 바닥 깔개와 벽 피복재 모두에 사용하는 것(일반적으로 **제4823호**)
- (d) 외양이 창용 투명지와 다소 유사한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somania)](**제4908호**)
- (e)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로서 종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5905호**)
- (f) 알루미늄박(aluminium foil)으로 만든 벽 피복재로서 종이를 뒷면에 붙인 것(**제7607호**)

[48.15]

48.16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 셀프복사지

4816.90 - 기타

이 호에는 압력[예: 타이프라이터 키(typewriter key)를 두드림으로써]·습기·잉크 등에 의하여 원본의 복사가 일 때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도포한 종이·침투된 종이를 분류한다.

이러한 종이류는 폭이 36cm를 초과하지 않는 롤(roll) 모양의 것이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cm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제4809호**에 분류한다. 등사원지(duplicator stencil)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지에 있어서는 크기에 대한 조건이 필요없다. 이 호의 물품은 대개 상자에 넣어져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복사 과정에 따라서 다음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A) 도포한 물질이나 침투한 물질의 전부나 일부가 다른 표면에 이전되어 원본을 복사하는 종이

이 범주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카본지(carbon paper)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이 물품은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그 밖의 착색료와 혼합한 지방성 물질이나 왁스(wax) 물질을 도포하거나 때로는 침투시켜서 만든다. 보통의 종이 위에 복사하는데는 펜·연필·타자기를 사용한다.

이들 종이는

- (a) 간지와 일회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얇은 종이(thin paper)이거나
- (b) 보통 세트(set)의 부분을 형성하는 보통 중량의 도포한 종이이다.

이 그룹에는 복사기에 사용하는 헥토그래픽카본지(hectographic carbon paper)(이것은 많이 복사하기 위하여 인쇄 “플레이트(plate)”로서의 역할을 하는 마스터시트(master sheet)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도 포함한다.

(2) 셀프 복사지(self-copy paper)

카본(carbon)이 없는 복사지(carbonless copy paper)로도 알려진 이 복사지는 부채를 접은 형으로 되어 있다. 사무용 기기나 철필에 의하여 원본에 가하여진 압력은 보통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성분 사이에 반응을 일으켜서 동일 면이나 인접한 두 개의 면에 원본에 가하여진 압력의 형이 복사된다.

(3) 열전사지(heat transfer paper)

이것은 감열성 물질이 한 쪽면에 도포되어 있는 종이며 도포 물질을 혼합한 염료를 보통의 종이 위에 이전시키는 과정에 의하여 원본이 복사되는 적외선 복사기에 사용한다(열전사 처리).

(B) 앞에서 설명한 (A)이외의 방법에 의한 복사지·등사원지·오프셋플레이트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등사원지용 종지와 등사원지

등사원지용 종이(paper for duplicator stencil) : 얇고 강도가 높고 파라핀(paraffin)이나 그 밖의 왁스(wax), 콜로디온(collodion),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도포·침투시켜 방수한 사이징을 하지 않은 종지이다. 타자기·철필·그 밖의 적당한 기구로 압력을 가하여 도포된 표면에 복사될 문자나 모양대로 구멍을 뚫는다.

등사원지 : 보통 분리가 가능한 두꺼운 이장지(detachable paper)를 상단에 부착하여 조제한 원지가 복사기에 고정되도록 특별히 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때로는 카본(carbon) 복사를 위하여 종지가 삽입되어 있다. 더욱이 등사원지는 일반적으로 안내표시나 그 밖의 여러 가지가 특별히 인쇄되어 있다.

이 호에는 프레임(frame)이 있는 주소인쇄기용 원지도 포함한다.

(2) 오프셋 플레이트용 종지와 오프셋 플레이트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용 종지는 석판인쇄용 잉크(ink)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 쪽 면을 특수 물질로 도포한 것이다. 이것은 손이나 기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문자나 디자인(design)을 보통의 종이 위에 복사하기 위하여 사무용 오프셋(offset) 인쇄기에 사용한다.

*
* *

이 호의 종지는 부채를 접은 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복사과정의 둘 이상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쪽 면에 특수잉크(special ink)를 도포한 종이로서 [카본지(carbon paper)의 경우와 같다] 이에 의해 문자나 디자인(design)의 반전 이미지(reverse image)를 앞에서 설명한 (B)(2)항에 기재된 플레이트(plate)와 유사한 제2의 종이 위에 형성한다. 이러한 제2의 종지를 적당한 등사기 위에 올려놓고 누르면 여기에 부착된 잉크(ink)로 인해 보통의 종이 위에 원본과 같은 상(positive image)이 전사되고 또한 많은 복사가 가능하다.

복사할 문구나 디자인(design)을 내재하고 있는 복사지나 전사지도 이 호에 분류하는데 순서대로 편철되어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스탬프용 박(stamping foil)이나 블로킹용 박(blocking foil)로서 알려진 전사지 : 이것은 금속·금속 가루·안료를 도포한 얇은 종이로서 책의 표지·모자의 밴드(band) 등의 인쇄에 사용한다(**제3212호**).
- (b)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지와 판지
- (c) 젤라틴(gelatin)으로 제조된 복사용 페이스트(paste)(종이의 지지물이 있는 것)(**제3824호**)
- (d) 얇은 플라스틱층으로 만든 등사원지로서 분리가능한 종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정의 크기로 절단되고 한쪽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제39류**)
- (e) 직접 도포 물질을 흑화함으로써 서류원본을 복사(열복사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감열성 물질을 도포한 종이 (**제4811호나 제4823호**)
- (f) 여러 가지 사무용 양식과 삼입식 카본세트(carbon set)(**제4820호**)
- (g)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comania)](**제4908호**)

48.17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 - 봉투

4817.20 -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4817.3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통신용에 사용하는 종이와 판지로 만든 통신용지, 예를 들면, 봉투·봉함엽서·보통엽서[통신용 카드(card)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그러나 철하지 않은 별개의 필기용지나 종이철과 뒤에 설명하는 특정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통신용지로서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으로 주소·이름·상표·장식·문장·머리글자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봉함엽서(letter card) :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봉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풀칠을 하거나(때로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해 놓은 시트(sheet) 모양의 종이·판지·카드를 말한다.

우편엽서(plain postcard) : 주소란·우편란이나 그 밖의 용도에 관한 표시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신용 **카드(correspondence card)**로서 가장자리를 다듬지 **않았거나** 금박을 입히지 않은 것이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지 **않은 것이나** 문구용으로서의 용도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인쇄나 그 밖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처리를 하지 않은 보통엽서(plain card)는 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제4810호·제4811호·제4823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pouch)·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접거나 접지 않은 시트(sheet) 모양의 편지지(letter paper)(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상자에 담겨 있거나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제4810호·제4811호**에 분류될 수 있다)
- (b) **제4820호**의 편지지철·메모철 등
- (c) 현재 유통 중인 우표로 인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인을 날인한 봉투·우편엽서·봉함엽서(**제4907호**)
- (d) **제4909호**의 인쇄한 엽서나 그림엽서와 인쇄한 카드
- (e) 특수 목적을 위하여 만든 인쇄한 편지와 이와 유사한 것. 예를 들면, 청구서·이전통지서·광고용 편지(완성할 때 육필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물품도 포함한다)(**제4911호**)
- (f) 그림이 있는 초일봉투와 맥시멈 카드(maximum card)(우표가 없는 것은 **제4911호**에, 우표가 있는 것은 **제9704호**에 분류한다)

48.18 -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손수건 · 클렌징티슈 · 타월 · 책상보 · 서비에트(serviette) · 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 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 · 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 ·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 화장지

4818.20 - 손수건 · 클렌징티슈 · 안면용 화장지 · 타월

4818.30 -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818.5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4818.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한다.

- (1) 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 · 롤(roll) 모양의 것
- (2)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cm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

또한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 ·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 · 위생용품 · 병원용품 · 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제4803호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셀룰로오스워딩(내과 · 외과 · 치과 · 수의과 목적으로 의약품을 침투한 것 · 도포한 것 · 소매용의 모양으로 한 것 · 포장으로 한 것)(**제3005호**)
- (b) 향기가 나는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한 종이 · 도포한 종이(**제33류**)
- (c)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으로서 비누나 세제를 도포한 것 · 피복한 것(**제3401호**), 광택제 · 크림(cream) ·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제3405호**)
- (d) **제64류**의 제품
- (e)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
- (f) 위생타월(sanitary towel)[패드(pad)]과 탐폰(tampon) · 냅킨(napkin)(기저귀)과 냅킨 라이너(napkin liner) ·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48.19 -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 · 포장대
·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 · 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9.2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819.30 -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819.4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819.5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4819.60 - 서류상자 · 서류받침 · 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A) 상자류(carton · box · case) · 포장대(bag)과 그 밖의 포장용기(packing container)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 · 수송 · 저장 ·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용기를 분류하며 장식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롤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 · 백(bag) · 콘(cone) · 패킷(packet) · 자루 · 판지로 만든 드럼(drum)(용기)(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band)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서류수송용의 튜브(tube)상 용기 · 의류 보호용의 백(bag) · 단지 · 향아리 · 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cream)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wax)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진공소제기용의 백 · 멀미용 백 등 특수 목적의 종이백(paper bag)과 음반용 백과 음반 커버(record sleeve)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접는 식의 상자류도 포함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한 매로 만든 평면상태의 상자류로서 접거나 끼워 넣음으로써 조립하기 위한 것[예: 케이크(cake)상자] ;
- 한 면만을 글루(glue) · 스테이플(staple) 등으로 조립하거나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용기로서 다른 면은 용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 형성되는 것. 밑바닥이나 뚜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접착테이프 · 스테이플(staple) 등의 고착시키는 수단을 추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그룹의 물품들은 상품명 · 용법 · 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농장명에 추가하여 물품의 그림과 씨뿌리는 방법 등을 인쇄한 종자패킷과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초콜릿 패킷이나 곡류 패킷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속물이 부착될 수 있다[예: 직물을 뒷면에 댄 것 · 목제지지물 · 끈으로 된 손잡이 ·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서리].

(B) **서류상자·서류받침·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서류 캐비닛(cabinet)·서류상자·서류받침·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내구성 있는 용기를 분류하며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앞(A)항의 포장용 용기보다 더 훌륭하게 만든다. 이러한 물품은 사무실·상점·창고 등에서 여러 가지 서류의 편철용이나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물품은 종이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속품[예: 경첩·손잡이·금속·나무·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열쇠 장치]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들은 또한 표시용 카드(indication card)를 삽입하도록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프레임(frame)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제4202호**의 물품(여행용품 등)
- (b) 종이로 만든 조물용기(**제4602호**)
- (c) **제4811호**의 도포·피복·인쇄한 종이나 판지로서 롤(roll) 모양으로 제시된 용기 제조용의 것[롤(roll)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과 표시가 있는 것]
- (d) 견본용이나 수집용의 앨범(album)(**제4820호**)
- (e) 종이실로 만든 빈포대(sack and bag)(**제6305호**)

48.2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820.20 - 연습장

4820.3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4820.4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820.5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820.90 - 기타

이 호에는 **제4817호**의 통신용 물품과 이 류의 주 제10호의 물품 **이외의** 여러 가지 문방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장부·회계부·모든 종류의 노트북·주문장·영수장·복사용지책·일기장·편지지철·메모철·약속메모수첩·주소록·전화번호기재용 수첩·철 등
- (2) 연습장 : 이들 연습장은 단순히 종이시트가 선이 그려진 상태로 들어 있기도 하며, 또한 손으로 그대로 모방하여 쓸 수 있는 필사(筆寫 : handwriting)의 예가 인쇄한 상태로 들어있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장으로서의 본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본문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연습이 인쇄되어 있고 보통 손으로 써서 완성하는 공란이 있는 교육용 학습장(습자책으로도 불리우며, 이야기체의 본문이 있기도 한다)은 **제외한다(제4901호)**. 또한, 필기용이나 그 밖의 연습용의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본문이 보충된 그림으로 이루어진 어린이용 학습장도 **제외한다(제4903호)**.

- (3) 루스 시트(loose-sheet)·매거진(magazine)·이와 유사한 것을 고정하기 위한 바인더(binder) [예: 클립바인더(clip binder)·스프링바인더(spring binder)·스크루바인더(screw binder)·링바인더(ring binder)]와 폴더(folder)·서류철 표지·서류철(서류철 상자를 **제외한다**)·종이끼우개(portfolio)
- (4) 각종 사무용 양식 : 이들은 복사지 자체에 프린트(print)되어 있거나 카본(carbon)지를 삽입한 각종 양식의 세트(set)들이다. 이들 양식은 다수의 복사를 하는데 사용하며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이다. 이들 양식에는 완성하는데에 있어서 자료의 추가 삽입이 필요하는 인쇄물도 포함한다.
- (5) 삽입식 카본세트(interleaved carbon set) : 이들은 각종의 사무용 양식과 비슷하나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것이거나 레터헤드(letter head)(상단에 회사명, 상표 등)같은 식별정보만 들어있다. 이것은 다수 사본을 타이핑(typing)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며, 대다수의 각종 사무용 양식처럼 접착되어 있으며, 바늘구멍 모양의 절취되고 남은 부분(stub)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 (6) 견본용 앨범이나 수집용 앨범(예: 우표·사진)
- (7) 압지철(blotting-pad)(접는 방식인지 안접는 방식인지에는 상관없다)와 같은 그 밖의 문구제품
- (8) 책표지[바인딩(binding)표지와 더스트커버(dust cover)] : 문자[타이틀(title) 등]나 삽화를 인쇄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의 일부 제품에는 때때로 상당한 부분이 인쇄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인쇄가 양식[본질적으로는 손이나 타이프(type)로 완성한다]과 일기장(본질적으로 필기용)의 예와 같이 주용도에 부수적인 경우는 이 호(제49류에 분류하지 않는다)에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종이 이외의 재료[예: 가죽·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를 부착한 경우도 있으며,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보강재와 부착물을 첨가한 경우도 있다.

반면에 주로 목재·대리석 등으로 만든 탁상용 메모철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서 목제품·대리석제품 등으로 분류한다. 루스리프식(loose-leaf) 책용의 구멍을 뚫은 시트(sheet)를 포함한 연습장과 그 밖의 필기용 종이로서 묶지 않은 시트(sheet)는 일반적으로 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제4810호·제4811호·제4823호**로 분류한다. 앨범용에 사용하는 루스리프(loose-leaf)식 종이라도 이 호에서 **제외하고**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수표장(**제4907호**)
- (b) 기입하지 않은 멀티-쿠폰(multi-coupon)식 승차권(**제4911호**)
- (c) 복권·"스크래치 카드(scratch card)"·래플 티켓(raffle ticket)과 톰볼라 티켓(tombola ticket)(보통 **제4911호의 것**)

48.21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 인쇄한 것

4821.90 - 기타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나 판지로 만든 모든 레이블(label)을 분류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신원·소유자·송달처·가격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물품에는 스티커식(stick-on type)의 것(접착제에 의한 것이나 자기접착제의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예: 끈) 부착되도록 만든 것이 있다.

이러한 레이블에는 장식이 없는 것·문자나 그림을 대단히 많이 인쇄한 것·접착제를 사용한 것·끈·걸쇠·훅(hook)이나 그 밖의 고착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한 것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시트(sheet) 모양·소책자상 등의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나 묶어져 있는 것도 있다.

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광고·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코믹 스티커(comic sticker)·윈도우 스티커(window sticker)]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911호)**.

비교적 강한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 시트(sheet) 모양의 일면이나 양면에 얇은 시트 모양의 종이(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피복되어 있는 레이블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326호·제7616호·제7907호 등이나 제8310호)**.



[소호해설]

소호 제4821.10호

이 소호에서는 해당 레이블(label) 위에 나타난 인쇄의 중요성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인쇄한 레이블을 분류한다. 따라서 인쇄한 레이블 예를 들면, 선이나 그 밖의 간단한 보더(border)를 인쇄한 레이블이나 단순히 작은 모티프(motif)나 그 밖의 부호를 부착시킨 레이블은 이 소호에서 “인쇄한 것(printed)”으로 간주한다.

48.22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1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4822.90 - 기타

이 호에는 공업용·소매용의 실이나 선을 감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빈(bobbin)·튜브(tube)·스풀(spool)·콕(cop)·콘(cone)·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직물·종이·그 밖의 재료를 감는데 사용하는 원통모양의 심(끝을 개방한 것이나 폐쇄한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로 만들거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를 말아서 만들거나 펄프(pulp)를 압착·성형하여 만들어진다(이 류 총설의 끝에서 둘째 항 참조). 이 물품은 가끔 구멍이 뚫어져 있다. 이 물품은 아교칠을 하거나 플라스틱 등이 침투·도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적층된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9류)**.

보빈(bobbin)·튜브(tube)·스풀(spool) 등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목재·금속·그 밖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착품을 부착한 있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평판 모양의 지지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823호)**.

48.23 -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 여과용 종이와 판지

4823.4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 -- 대나무로 만든 것

4823.69 -- 기타

4823.7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4823.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이 류의 앞 호까지 중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 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36cm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

그러나 제4802호·제4810호·제4811호에 분류하는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종이와 판지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은 크기에 상관없이 여전히 이들 호에 분류됨을 유의해야 한다.

(B)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과용 종이와 판지(접거나 접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이들은 원형의 여과용 종이와 보드와 같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2)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한 다이얼(dial).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와 판지로서 이 류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

(4) 종이나 판지로 만든 접시·쟁반·플레이트(plate)·컵(cup)·이와 유사한 것

(5) 제지용 펄프(pulp)로 만든 몰드(moulded)나 압형한(pressed) 제품

(6) 그래픽(graphic)용 이외의 플레이팅(plaiting)이나 그 밖의 용도의 도포되지 않은 스트립지(strip paper)(접었는지 접지 않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7) 페이퍼울(paper wool)(즉,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전체적으로 뒤엀킨 세폭의 스트립)
- (8) 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과자 포장지·과실 포장지·그 밖의 포장지
- (9) 케이크(cake)용 카드(card)와 종이 ; 잼포트(jam-pot) 덮개 ; 가방용으로 조형한 종이
- (10) 자카드(Jacquard)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종이와 판지제의 구멍을 뚫은 카드 (이 류의 주 제11호 참조). 즉, 직기에 맞게 미리 구멍을 뚫은 것[종이나 판지로 만든 “구멍을 뚫은(punched)” 카드]
- (11) 종이로 만든 레이스(lace)와 자수 ; 셸프에징(shelf edging)
- (12) 종이로 만든 개스킷(gasket)과 와셔(washer)
- (13) 스탬프(stamp)대지·사진대지용 코너(corner)·사진대지·슈트케이스(suit-case)용 보강코너
- (14) 방적용 캔(can) ; 사(絲 : yarn)·리본(ribbon) 등을 감기 위한 평판 모양의 카드(card) ; 알(egg) 포장용의 성형 시트(sheet)
- (15) 소시지 케이싱(sausage casing)
- (16) 드레스(dress)용의 본(pattern)·모델(model)·형지(template)(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17) 부채와 핸드스크린(hand screen)[대(mount)와 잎(leaf)이 종이로 만든 것이고 프레임(frame)이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된 것으로서 대(mount)가 별도로 제시된 것]. 다만, 프레임이 귀금속으로 된 부채와 핸드스크린(hand screen)은 **제7113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하는 물품 이외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파리 잡는 끈끈이 종이(**제3808호**)
- (b)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을 침투시킨 스트립(strip)(**제3822호**)
- (c) 섬유판(**제4411호**)
- (d) **제4802호**의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피복하지 않은 스트립종이(strip paper)
- (e) **제4810호**나 **제4811호**의 도포·피복·침투된 스트립종이(strip paper)
- (f) 복권·“스크래치 카드(scratch card)”·래플 티켓(raffle ticket)과 톰볼라 티켓(tombola ticket)(보통 **제4911호**)
- (g) 종이로 만든 우산(**제6601호**)
- (h) 인조의 꽃·잎·과실과 그 부분품(**제6702호**)
- (ij) 애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제85류**)
- (k) **제90류**의 물품[예: 정형외과용의 기기·전시용 장치·과학기구용의 다이얼(dial)]
- (l) 시계용의 문자판(**제9114호**)
- (m) 탄피(cartridge case)와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cartridge wad)(**제9306호**)
- (n) 램프갓(lampshade)(**제9405호**)

제 49 류

인쇄서적 · 신문 · 회화 ·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 · 타자문서 · 도면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투명한 기본 재료로 된 사진용 네거티브 · 포지티브(제37류)
 - 나. 부조(浮彫)된 지도 · 설계도 · 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023호)
 - 다.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그 밖의 물품
 - 라. 오리지널 동판화 · 목판화 · 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 · 수입인지 · 요금별납증지 · 초일(初日) 봉투 · 우편엽서류나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이나 그 밖의 물품
2.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 · 사진촬영 · 사진복사 · 열전도복사 · 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
3. 신문 · 잡지 · 정기간행물을 종이 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 · 잡지 · 정기간행물의 2부 이상을 한 장의 표지 안에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로 분류한다(광고 선전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제4901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나 삽화[전지번호를 붙였는지 또는 별개의 시트(she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는 제4911호로 분류한다.
 - 가. 회화나 도면 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 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제본된 책자에 딸린 그림이 있는 부록
 -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모양으로 한 것, 분리된 시트(sheet), 전지번호를 붙인 모양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하며, 제본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 · 팸플릿(pamphlet) · 리플릿(leaflet) ·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 · 상업단체와 관광회사의 연감]은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로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한다.

총설

아래 언급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 · 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

**제10부
제49류**

그러나 **제4814호**나 **제4821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그 제품으로서 이러한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예: 인쇄한 포장용지, 인쇄한 문구류)은 **제48류**에 분류한다. 그리고 인쇄가 주로 장식용이나 신안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카프(scarve)나 손수건 같은 인쇄한 직물과 인쇄한 디자인(design)이 있는 자수직물과 조제된 태피스트리 캔버스(prepared tapestry canvas)는 **제11부**에 분류한다.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motif)·문자·그림을 인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offset)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무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 그러나 이 “인쇄한 것(printed)”이란 말에는 채색·장식적 인쇄·반복적인 도안 인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류에는 육필이나 타이프(type)로 친 문구의 카본(carbon) 복사와 손으로 제작한 유사 물품(손으로 그린 지도와 설계도를 포함한다)도 포함한다.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상점 간판과 상점 원도우에 사용하는 도자제, 유리·비금속(卑金屬)으로 된 문자, 숫자, 사인판과 이와 유사한 모티브(motif)로 인쇄한 서화나 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제6914호**, **제7020호**와 **제8310호**에 분류하거나 조명용의 경우는 **제9405호**에 분류한다.

보통의 인쇄제품[예: 서적·신문·팸플릿(pamphlet)·그림과 광고물] 이외에 이 류에는 인쇄한 전사지[데칼코마니(decalsomania)], 인쇄나 그림 설명이 있는 엽서, 연하장; 캘린더(calendar), 지도, 설계도와 도안; 우표, 수입인지와 유사한 스탬프(stamp) 등의 물품도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불투명체를 기본 재료로 한 축소복사물(microcopy)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축소복사물은 사진판 인쇄물의 크기를 극도로 줄여서 복사하는 광학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며; 축소복사물은 일반적으로 확대장치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37류**의 투명한 기본재료[예: 마이크로필름(microfilm)] 위의 네거티브(negative)나 포지티브(positive) 사진
- (b) **제97류**의 물품

49.01 -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기타

4901.91 --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4901.99 -- 기타

이 호에는 광고 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쇄한 독서물(도해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서적(book)과 소책자(booklet)** :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의 언어나 문자(점자나 속기부호를 포함한다)로 인쇄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예작품·교과서[습자책으로도 불리는 교육용 학습장 포함하며 질문이나 연습(보통 손으로 완성되는 공란이 있다)이 포함된 이야기체의 본문이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 전문서 ; 사전·백과사전·성명록[예: 전화번호부(“옐로우 페이지(yellow page)”를 포함한다)] 등의 참고서적·박물관·공공도서관 카탈로그(catalogue)[상업용 카탈로그는 **제외한다**] ; 기도서와 찬미가집(**제4904호**의 약보가 있는 찬미가집은 **제외한다**)과 같은 예배용 책 ; 아동용 책 (**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책자는 한 권 이상으로 제본되는 경우가 있으며(종이로 되어 있거나, 얇은 표지나 두꺼운 표지를 사용), 완전한 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하는 시트(sheet)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와 제본용으로 디자인된 것도 있다.

서적에 부착된 책커버(dust cover)·클래스프(clasp)·서표(book-mark)와 그 밖의 소부속품은 서적을 형성하는 부분품으로서 간주한다.

(B) **브로셔(brochure)·팸플릿(pamphlet)·리플릿(leaflet)** : 이 물품들은 인쇄한 여러 장의 독서물을 묶었거나[예: 스테이플러(stapler)로 철한 것] 묶지 않은 시트(sheet)로 되어 있거나 단매의 시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단문의 과학논문과 전공논문·정부나 그 밖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지도서 등·소책자(tract)·찬미가집 등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개인 인사·전언·안내를 담은 인쇄한 카드(**제4909호**)와 완성을 위해서는 특정 추가적인 정보의 삽입이 요구되는 인쇄한 양식(**제4911호**)은 **제외한다**.

(C) **루스리프(loose-leaf)식에 의하여 철해지는 시트 모양의 문자로 된 자료(textual matter)**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분류한다.

(1) 종이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제본된 신문·잡지와 정기간행물. 하나의 표지 밑에 둘 이상이 있는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의 세트(set)(광고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제본된 그림책(**제4903호**에 해당되는 아동용 그림책은 **제외한다**)

(3) 미술(art)·그림(drawing) 등의 작품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예: 예술가의 전기)이 있으며 페이지를 넣어 제본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4) 제본된 책자에 부착된 그림이 있는 부록(보충설명용을 포함한다)

그 밖의 회화적인 출판물은 이 호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제4911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3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광고 목적이 위주인 모든 간행물(여행안내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비록 직접적인 광고 가치가 없더라도 선전 목적을 위하여 상인에 의해서나 상인을 위하여 간행된 출판물도 **제외한다**. 이러한 광고용 간행물에는 예를 들면, 상업용 카탈로그(trade catalogue)·상업 단체가 출판한 연감으로서 회원들의 실질적 광고가 많이 함유되고 어느 정도의 정보적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것·출판자가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킨 출판물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광고가 간접적이거나 숨겨져 있는 출판물, 즉, 본질적으로는 광고를 위주로 한 것이지만 광고가 의도된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출판물도 제외한다.

그러나 직접·간접적인 광고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제조회사에 의하거나 제조 회사를 위하여 발행되는 과학적 논문이나 상업·공업분야에서의 동향·진척 상황·활동을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출판물 등은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 (a) 복사할 문구나 디자인(design)을 내재하고 있는 순서대로 첩된 복사지나 전사지(**제4816호**)
- (b) **제4820호**에 분류하는 일기장과 그 밖의 문방구. 이것은 본질적으로 손이나 타이프(typescript)에 의하여 기입함으로써 완성된다.
- (c) 신문·잡지·정기간행물로서 단매로 된 것·묶지 않은 것·종이만으로 묶은 것(**제4902호**)
- (d) 필기용이나 그 밖의 연습용의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구가 보충하여 들어 있는 어린이용 학습장(**제4903호**)
- (e) 악보(**제4904호**)
- (f) 지도책(**제4905호**)
- (g) 인쇄한 본문없이 그림으로 된 책자의 일부[전지번호를 붙인 모양이나 분리된 시트(sheet)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제4911호**)

49.02 -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4902.90 - 기타

이 호에 분류하는 간행물의 특성은 동일 제목하에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일련의 간행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의 하나하나에는 일자가 기입되며(단순히 계절만을 표시한 것도 있다. 예: “Spring 1966”) 번호가 매겨진 경우가 많다. 이 물품은 묶여 있지 않거나 종이로 묶여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묶여 있는 것과 단일의 표지에 두 매 이상의 간행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901호)**. 이러한 간행물은 본질적으로 독서물로 되어 있으며 삽화가 풍부하게 있는 것과 주로 회화적인 인쇄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간행물에는 광고 선전물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간행물의 유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신문(newspaper)** : 이것은 일간·주간으로 발행되며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시사성 뉴스(news)를 주로 게재하고 시사·역사·전기 등의 흥미있는 문제에 관한 문예기사가 함께 실리는 묶지 않은 시트(sheet) 모양의 인쇄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면의 상당한 부분을 삽화와 광고를 게재한다.
- (2) **잡지와 그 밖의 정기간행물(journal and other periodicals)** : 이것은 주간·격주간·월간·계간·반기간으로 발행되며 신문 형태를 취하거나 종이로 채분된 간행물의 형태로 발행된다. 이들은 특별한 전문적 성격의 문제나 부분적 관심사[예: 법학·의학·재정학·상업·패션(fashion)·운동]에 대한 보도를 위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조직에 의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발행된다. 그러나 보통의 픽션(fiction) 잡지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관심사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제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저명한 산업관련 업체(예: 자동차 제조공장에 의하거나 산업관련업체를 위하여 간행되는 정기간행물, 일반적으로 산업체 등의 기관지로서 특정의 공업계 등의 기관에만 배부하는 사보나 광고목적에 의하여 상인이나 협회가 발행하는 패션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

일정 시기를 제한하여 미리 예정된 시기에 주간·격주간 등으로 발행하는 대작의 일부(참고서적 등)는 정기간행물로서 인정되지 않고 **제4901호**에 분류한다.

신문이나 정기간행물과 함께 발행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되는 그림·모형 등의 부록은 그 간행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묵은 신문지·잡지·정기간행물로 이루어진 웨이스트 종이(waste paper)는 **제4707호**에 분류한다.

49.03 -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이나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않은 것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이 범주에는, 예를 들면, 그림 알파벳(alphabet)책과 각 그림에 관련된 제목이나 간단한 이야기가 있는 일련의 삽화 그림에 의해 전달되는 동화감정류의 책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범주에는 필기용이나 그 밖의 연습용의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충 문구가 들어 있는 어린이용 학습장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비록 풍부한 삽화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선정된 이야기에 대해 삽화만이 있고 이야기체로 계속 되어 있는 서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품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서적들은 종이·직물 등에 인쇄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용 래그북(rag book)도 포함한다.

바로 세운 그림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부착하고 있는 아동용 그림책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물품이 본질적으로 완구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제95류)**. 이와 마찬가지로 도려낼 수 있는 그림이나 모델(model)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용 그림책도 “도려낼 수 있는(cut-out)” 부분이 적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지만 만약 전체나 일부분을 도려낼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pages)(표지를 포함한다)가 전체 페이지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비록 상당량의 문언이 함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완구류로서 인정된다(**제95류**).

이 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도 포함한다. 이러한 책은 주로 제본되어 있으며(때로는 떼어 낼 수 있는 우편엽서의 형태의 것도 있다) 각 페이지(page)에는 보고 그릴 수 있는 단순한 그림이라든가 그림의 윤곽이 있으며, 그려 넣거나 채색함으로써 완성되며(또한 설명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지도용의 채색된 그림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여기에는 연필을 문지르거나 화필로 물을 칠하여 나타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윤곽이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책도 포함되며 또한 채색에 필요한 소량의 수채화용 물감을 가지고 있는 책[예: 팔레트(palette)의 형태]도 포함한다.

49.04 -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인쇄나 수제(手製 : manuscript)의 기악용·성악용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악보를 분류하는데 제본한 것과 삽화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기보법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다 [예: 토닉솔파(tonic sol-fa)법·보표기법·숫자기보법·점자악보(Braille music)].

이 호의 악보는 종이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하였거나 손으로 쓰여져 있으며 분리된 시트(sheet) 모양(판지를 포함한다)의 것이나 제본된 것 등이 있다(그림이나 그에 따르는 문구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쇄나 수제(手製 : manuscript)의 보통 악보 이외에 이 호에는 찬미가집·보표(축소판을 포함한다)나 음악지도용 서적(교본) 등도 포함되는데 다만, 이들이 지도용 문언뿐만 아니라 연습용이나 실습용 악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의 악보에 부착되어 있는 책커버는 악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서적의 문언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이라든가 도해적인 악보[예를 들면, 서적의 문언에 인용된 특수 주제거나 모티프(motif)]가 기입된 서적·카탈로그(catalogue) 등(**제4901호**나 **제4911호**)
- (b)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card)·디스크(disc)와 롤(roll)(**제9209호**)

49.05 -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20 - 책자로 된 것

4905.90 - 기타

이 호에는 국토·도시·바다·천체 등의 자연적인 모양이나 인공적인 모양의 등고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호를 사용하여 만든 여러 가지의 인쇄한 지구의(예: 지구·달·천체의)·지도·차트(chart)·도면을 분류한다. 광고가 있는 지도나 차트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종이나 그 밖의 재료(예: 직물)에 인쇄되어 있으며 보강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또한 이들은 단매의 시트(sheet) 모양이나 접혀진 시트 모양이나 위의 시트 모양의 것을 집합하여 책으로 제본된 형태(예: 지도책)도 있다. 이들은 이동가능한 지시기와 롤러(roller)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투명한 보호용 커버(cover)나 그 밖의 부착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지리학용의 지도(지구의 형태를 포함한다)·도로지도·벽걸이용 지도·지도책·해도·지리학용이나 천문학용의 차트(chart)·지질학의 측량도·지형학의 도면(예: 도시나 구역의 계획도)

이 호에는 또한 단순한 완구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조명장치를 내재한 인쇄한 지구의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지도나 도면을 단순히 부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서적(**제4901호**)
- (b) 수제의 지도·도면 등과 이들의 카본(carbon) 복사와 이들의 사진 복사물(**제4906호**)
- (c) 완성된 지도·차트(chart)·도면으로 만들지 않은 항공측량도나 지형사진(지형학상 정확성 여부에는 상관없다)(**제4911호**)
- (d) 어떤 국가나 지역의 특정 산업·관광·그 밖의 활동·철도망 등을 적당한 도해로 표시하기 위하여 만든 도해적인 지도(**제4911호**)
- (e) 장식을 목적으로 인쇄한 지도가 있는 스카프·손수건 등의 직물 제품(**제11부**)
- (f) 부조된 지도·설계도와 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023호**)

49.06 -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물·기계류·그 밖의 건설물의 부품이나 실물의 위치와 관계를 실물대로 나타내 보이거나 건설에 있어서 건설자나 제조자의 지침으로 사용하는(예: 건축가나 제조자용의 설계도와 도안) 산업용의 설계도·도안을 분류한다. 이러한 설계도와 도안은 사양서·지시사항 등(인쇄한 것인지 인쇄되지 않은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선전 목적의 도안과 개략도 등을 포함한다[예: 패션(fashion) 도안·포스터 디자인(poster design)·도기·벽지·신변장식용품·가구류용의 디자인].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감광성의 종이에 사진복사한 것·그러한 원본의 카본(carbon) 사진으로 한 것들**만**이 해당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도·차트(chart)와 지형학적인 도면으로서 인쇄되어 있는 것은 제4905호에 분류하고 만약 손으로 그린 원본·이들의 카본 사진이나 감광성의 종이에 사진복사한 것인 경우에는 이 호에 포함한다.

손으로 쓴 문구(속기한 것을 포함하며 약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카본 사진이나 감광성의 종이 위에 이들 본문을 사진복사한 것도 제본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복사할 내용을 쓰거나 타이프(type)한 복사지와 전사지(**제4816호**)
- (b) 인쇄한 설계도와 도안(**제4905호나 제4911호**)
- (c) 타이프 문서(typescript)[카본(carbon) 복사물을 포함한다]와 복사기에 의한 수기문서(manuscript)·타이프 문서의 복사본(**제4901호나 제4911호**)

49.07 -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은 특정 당국에 의하여 발행되며(필요한 경우에는 완결·유효한 후에) 물품 고유의 물리적 가치보다 큰 신용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인쇄한 스탬프(printed stamp)** : 이 물품은 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종류의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사용하지 않는 것(즉, 소인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스탬프는 특수 용지에 인쇄되어 있으며 대개 풀을 칠했고 여러 가지의 디자인(designs)과 색채를 넣어 그렸으며 그들의 가치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때로는 특수용도나 그 물품이 의도한 용도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우표류(postage stamp)** :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편물 배달료의 선불을 위하여 사용하나 어떤 국가에서는 수입인지(예: 영수증이나 증명서용으로)사용하는 수도 있다. 여기에는 요금 부족의 편지에 추가하여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요금부족(postage due)” 우표도 포함한다.

(2) **수입인지(revenue stamp)** : 이것은 법률문서·상용문서 등의 여러 가지 서류에 첨부하는데 사용하며 때로는 인지에 표시된 액수만큼의 정부세금이나 부과금을 지불하였다는 증거로서 물품 자체에 첨부하는데 사용한다. 과세되는 특정 물품에 납세의 표시로서 첨부하는데 레이블(labels)형의 수입인지도 이 호에 분류한다.

(3) **그 밖의 스탬프(other stamp)** : 예를 들면, 정부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제적·자발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예: 정부의 복지사업과 그 밖의 사회봉사계획에 대한 현금·국민저축으로서) 일반대중이 구입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구입할 때의 할인을 위하여 때때로 소매상인이 고객에 대하여 발행하는 스탬프(stamp) 모양의 증표·학교의 아동에 대하여 발행하는 종교적인 스탬프·기금을 모집하거나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선단체 등에 의하여 발행하는 스탬프와 개인이나 상업단체가 고객에 대하여 발행하는 “저축증표(saving stamp)”(**제4911호**)

(b) 이미 사용한 우표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해당국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발행되지 않은 우표(**제9704호**)

(B) **우표를 붙인 봉투·봉합엽서·우편엽서 등** : 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가진 사용하지 않은 앞에서 설명한 우표·수입인지를 인쇄하거나 찍은 봉투 등 [소인(消印)하지 않은 것]이나 “반신료 선지급(reply paid)”의 우편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

(C) **그 밖의 스탬프를 찍은(stamp-impressed) 종이** : 수입인지를 인쇄하거나 새긴 공문서용지·기입용지 등(예: 수입인지세 대상인 법률서류용의 것)

- (D) **지폐(banknote)** : 이것은 발행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통화(currency)나 법화(legal tender)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나 승인된 발권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러 가지 액면가액의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것에는 또 제시할 때 그 나라에서 아직 법화로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법화로 적용되지 않는 은행권도 포함한다. 그러나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은행권은 **제9705호**에 분류한다.
- (E) **수표(cheque form)** : 은행(어떤 국가에서는 우체국을 포함한다)이 발행하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탬프(stamp)를 찍거나 찍지 않은 백지식 수표를 집합하여 종이표지로서 소책자 모양으로 제본한 것이다.
- (F) **주식(stock) · 주식(share) · 채권(bond certificate) · 유사한 유가증권** : 이 물품들은 거기에 기재한 재정상의 권리 · 물품 · 이익 소유권 ·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 민간단체가 발행하는(또는 발행을 위한) 형식을 갖춘 증서를 말한다. 언급된 증명서 이외에 이러한 문서들에는 신용장 · 환어음 · 여행자수표 · 선하증권 · 부동산권리증 · 따로 떼어 쓰게 되는 쿠폰을 포함한다. 이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완결행위와 유효화 행위가 필요하다.

은행권 · 수표장과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투명 무늬(watermarking)나 그 밖의 무늬(mark)가 있는 특수 용지 위에 인쇄되어 있으며 보통은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 보안 용지에 인쇄되어 있고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복권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보통 **제4911호**에 분류한다.

위의 물품들은 보통 발행당국에 의하여 상거래 목적으로 다량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증서(예: 주권)가 완결행위와 유효화 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49.08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

4908.1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908.90 - 기타

전사지[transfer : 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검(gum)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輕量)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sheeting)] 위에 평판 인쇄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단색이나 다색으로 그림·디자인(design)·문자를 인쇄(그 자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다)한 것이다. 이 물품에는 종종 두꺼운 보강지로 뒷면을 붙인 경우가 있다. 때로는 디자인(design)을 금속박(metal leaf)의 이면에 인쇄한 경우도 있다.

인쇄한 종이에 습기를 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구물질표면[예: 유리·도자기·목재·금속·석(石)·종이]에 대고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그림 등이 인쇄한 도포 물질이 그 내구물질의 표면에 전사된다.

이 호에는 또한 유리화할 수 있는 전사지(vitrifiable transfer), 즉, 제3207호의 유리화할 수 있는 조제품을 인쇄한 전사지도 분류한다.

전사지(transfer)는 장식용이나 실용의 목적, 예를 들면, 장식용의 도자기·유리·차량·기계류·기구류 등의 마크 표시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주로 아동들의 오락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는 전사지도 이 호에 분류하며 또한 자수용이나 양말용의 전사지[디자인(design)을 물감으로 그린 후 가열된 매끄러운 다리미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보통 직물의 표면에 디자인이 전사된다]를 포함한다.

위에 설명한 물품은 **제4814호**나 **제4911호**에 분류하는 창용 투명지(window transparency)로 알려진 제품과 혼동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금속·금속 가루·안료를 도포하여 조제되었으며 책표지·모자밴드(band) 등의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스탬프용 박(stamping foil)과 블록용 박(blocking foil)으로 알려진 종류의 전사지도 **제외한다(제3212호)**. 석판인쇄에 사용하는 그 밖의 전사지(transfer paper)는 **제4809호**나 **제4816호** 중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49.09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 전언용 · 안내용으로서 그림 · 봉투 ·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i) 인쇄된 엽서나 그림엽서(개인용 · 상업용 · 광고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ii) 인사용 · 전언용 · 안내용의 인쇄카드(printed card). 이와 같은 인쇄된 카드는 그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봉투나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그림엽서(picture postcard)** : 즉, 우편엽서로서의 용도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고 한 면의 전체나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의 그림으로 충당된 엽서이다.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은 **제4911호**의 그림으로 분류한다. 이들 그림엽서는 시트(sheet) 모양의 것이나 소책자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이 주된 특성이 아닌 인쇄엽서(예: 광고선전물이나 작은 그림이 들어 있는 특정의 엽서)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우표를 인쇄하거나 압인한 엽서는 **제외한다(제4907호)**. 인쇄가 단지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부수적인 단조로운 우편엽서도 또한 **제외한다(제4817호)**.
- (2) **크리스마스카드(Christmas card), 연하장, 생일용 카드, 이와 유사한 카드** : 이들은 그림엽서의 형태나 두 매 이상의 접은 낱장종이(leaf)를 함께 묶은 것으로 하나의 면 이상이 그림으로 충당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카드(similar card)”의 범주에는 탄생이나 세례의 통지와 축하나 감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드를 포함한다. 인쇄카드(printed card)에는 리본(ribbon) · 끈 · 술(tassel)과 자수 등의 장식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접어 넣은 그림(pull-out view) 등의 신기한 모양을 부착하거나 유리 가루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때로는 종이 이외의 물질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젤라틴(gelatin) 위에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아동용의 그림 · 도안 · 채색책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림엽서(**제4903호**)
- (b) 캘린더(calendar)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카드(Christmas card)나 연하장(New Year Card) 등 (**제4910호**)

49.10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종이·판지·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 위에 인쇄한 여러 가지의 캘린더(calendar)를 분류하는데 다만, 인쇄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것에는 보통 계속되는 주간의 일자·요일 이외에 중요한 행사에 관한 정보·축제·천문학이나 그 밖의 자료·시구와 격언 등의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기재한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그림과 광고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로 공적·사적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된 간행물[때로는 부적당하게 캘린더(calendar)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선전물로서 **제4911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perpetual)”이나 종이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 가능한 블록(block)을 붙여 만든 캘린더(calendar)도 분류한다.

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紙片)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block)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한 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로 만든 바탕(base)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의 바탕(base)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calendar)가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
- (b)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인쇄된 캘린더 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

49.11 -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 기타

4911.91 -- 서화·디자인·사진

4911.99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틀에 든 서화나 사진은 제품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서화나 사진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하며 ;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들 제품은 목제품·금속제품 등으로서 틀을 분류하는 적정호에 분류한다.

사용시점에서 수기(manuscript)나 타이핑(typescript)에 의해 완성되도록 의도된 특정의 인쇄물은 본질적으로 인쇄물인 **한** 이 호에 그대로 분류한다(제48류의 주 제12호 참조). 따라서 특정 사항(예: 날짜와 이름)을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 인쇄된 양식[예: 잡지 구독 양식·기입하지 않은 멀티-쿠폰(multi-coupon)식 승차권(예: 비행기·철도·버스)·회람장·신분증명 서류와 카드(card)·전언·통지사항 등이 인쇄된 그 밖의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주식·증권·채권증서와 이와 유사한 권리증서와 수표 양식은 역시 완결 행위와 유효화 행위를 요구하지만 **제4907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필기나 타이프(typescript)용의 본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인 인쇄가 되어 있는 특정의 문방구는 **제48류**에 분류한다(제48류의 주 제12호 참조, 특히 **제4817호와 제4820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

- (1) 광고 선전물[포스터(poster)를 포함한다]·연감과 이와 유사한 광고용·선전용의 출판물·여러 가지의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예술작품의 카탈로그를 포함한다]와 여행자 안내책자. 다만, 신문·정기간행물과 잡지는 광고선전물이 포함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901호나 제4902호**의 적절한 호에 분류).
- (2) 서커스(circus)·스포츠행사(sporting event)·오페라(opera)·연극이나 이와 유사한 행사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팸플릿(pamphlet)
- (3) 인쇄한 캘린더백(calendar back)(삽화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4) 도해적인 지도
- (5) 해부학·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chart)와 도표(diagram)
- (6) 오락장(예: 영화·연극·음악회)입장 티켓(ticket)·공공이나 사적인 운송수단 승차권과 그 밖의 유사한 티켓
- (7) 이 류의 불투명체를 기본재료로 한 축소 복사물

(8) 디자인(design) 작업에 절단하여 사용하도록 문자나 기호를 플라스틱 필름(film of plastic)에 인쇄한 스크린(screen)

점·선·정사각형으로 단순히 인쇄한 스크린은 **제외한다(제39류)**.

(9) 맥시멈카드(maximum card), 그림이 들어있는 초일봉피(初日封皮)로서 우표가 없는 것 (제9704호 해설 D 참조)

(10) 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광고·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 [예: “코믹 스티커(comic sticker)”·“윈도우 스티커(window sticker)”]

(11) 복권·“즉석 복권(scratch card)”·추첨 티켓(raffle ticket)과 톰볼라 티켓(tombola ticket)

특히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필름(film)이나 플레이트(plate) 모양의 네거티브(negative)나 포지티브(positive) 사진(**제3705호**)

(b)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제4821호**의 물품이나 인쇄한 문자·그림이 그 제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인 **제48류**의 인쇄한 종이 제품

(c) 상점 간판과 상점 윈도우(shop window)에 사용하는 도자제·유리나 비금속(非金屬)제로 된 문자·숫자·사인판(sign-plate)과 이와 유사한 모티프(motif)로서 인쇄판 서화나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제6914호·제7020호·제8310호**에 분류하거나 조명용의 경우 **제9405호**)

(d) 한쪽 표면에 인쇄한 그림이 있는 장식용 유리 거울(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7009호나 제7013호**)

(e) 제85류의 주 제5호나목에 정의한 인쇄된 “스마트 카드(smart card)”[프록시미터 카드(proximity cards)와 태그(tag)를 포함한다](**제8523호**)

(f) **제90류나 제91류**의 기구나 장치용의 인쇄한 숫자판

(g) 인쇄한 종이로 만든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sheet)]·트럼프(playing card)와 유사한 것, 그리고 그 밖의 인쇄된 게임용품(**제95류**)

(h) **제9702호**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 즉,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어떤 제작공정과 재료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0502호), 말의 털과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제0511호)
 - 나. 사람 머리카락과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0501호·제6703호·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5911호)는 제외한다.
 - 다. 제14류의 면 린터(linter)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
 - 라. 제2524호의 석면, 제6812호·제6813호의 석면제품이나 그 밖의 제품
 - 마. 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치실(dental floss)](제3306호)
 - 바.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사.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직물·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류)
 - 아.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
 - 자.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 차.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와 모피(제41류·제43류), 제4303호나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 모피와 그 제품
 - 카. 제4201호나 제4202호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
 - 타. 제48류의 물품이나 제품(예: 셀룰로오스워딩)
 - 파.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각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 하. 제65류의 헤어네트·모자류와 그 부분품
 - 거. 제67류의 물품
 - 너. 연마 재료를 도포한 방직용 섬유재료(제6805호), 제6815호의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
 -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제70류)
 - 러.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조명기구)
 - 머.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망)
 - 버.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바느질용 여행세트·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타자기용 리본·위생 타월(패드)과 탐폰·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 서. 제97류의 물품

제11부

2.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제5110호)과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서는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 3)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
- 4)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목과 나목은 주 제3호부터 주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 가. 이 부에서 다음의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은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보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 1)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것으로서 2만테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 2) 인조섬유의 실(제54류의 두 가닥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만테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의 것
 - 가) 연마하거나 광택을 낸 것으로서 1,429테시텍스 이상인 것
 - 나) 연마하지도 광택을 내지도 않은 것으로서 2만테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 4) 코이어(coir)실로서 세 가닥 이상의 실로 된 것
- 5)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2만테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 6) 금속사로 보강한 실

나. 가목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양모사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만든 실과 종이실(paper yarn)(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 2)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 토우와 제54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꼬여 있는 멀티필라멘트사
- 3)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gut)와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
- 4)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가목의 6)에 해당하는 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 5) 제5606호의 셔닐사(chenille yarn)·짐프사(gimped yarn)·루프웨일사(loop wale-yarn)

제11부

4. 가.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나목의 것은 제외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
-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폐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폐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 2) 공(ball) 모양으로 감은 실이나 타래실은 다음 중량 이하인 것
 - 가) 3천데시텍스 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견사·견 웨이스트사는 85그램
 - 나) 2천데시텍스 미만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 다) 그 밖의 실은 500그램
 - 3) 간사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은 한 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 나. 가목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가)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것
 - 나)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 중 표백·염색·날염을 한 것으로서 5천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 2) 표백하지 않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
 - 가) 견사나 견 웨이스트사(어떤 포장이라도 가능하다)
 - 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실로서 타래로 감은 것(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 3) 견·견 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염색·날염을 한 것으로서 133데시텍스 이하인 것
 - 4)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
 - 가) 크로스릴(cross-reel) 모양의 타래로 감은 것
 - 나) 섬유공업에 사용하도록 실폐에 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은 것[예: 콕(cop)·연사(撚絲)용 튜브·핀(pirn)·원추형 보빈(bobbin)·스핀들(spindle)·누에고치 모양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5.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 가. 실폐(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폐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6.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 가.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단사 : 60센티뉴턴/텍스
 - 나.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53센티뉴턴/텍스
 - 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 : 27센티뉴턴/텍스
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디스터(duster)·타월·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
 -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
 -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 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운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 한 것
 - 바. 봉제·폴질·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
 - 사.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와 제60류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56류부터 제59류까지는 주 제7호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와 제60류는 제56류부터 제59류까지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이나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 층은 접착제나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10.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로 분류한다.
11. 이 부에서 침투에는 침지(沈漬)가 포함된다.
12. 이 부에서 폴리아미드에는 아라미드가 포함된다.
13. 이 부와 이 표에서 “탄성사”란 합성섬유로 만든 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텍스처드사는 제외한다)로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실을 말한다.
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15. 제11부 주 제1호를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의류·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화학적·기계적·전자적 구성요소를 장착한 것은 제11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불박이로 된 것이든 섬유나 직물 내에 결합된 것이든 상관없다). 다만, 이들이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
○ ○

소호주:

1. 이 부와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표백하지 않은 실

- 1) 구성하는 섬유가 고유의 색상이며 표백·염색(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날염하지 않은 것
- 2) 가닛스톡(garnetted stock)으로 만들어진 불특정의 색상을 가진 것[생지사(生地絲)]

이러한 실은 무색가공제나 순간염료(비누 세탁으로 간단히 색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처리된 것도 있으며, 인조섬유는 전체적으로 염소제(예: 이산화티타늄)로 처리된 것도 있다.

나. 표백한 실

- 1) 표백공정을 거친 것·표백한 섬유로 제조된 것,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나 백색가공으로 처리된 것
- 2) 표백하지 않은 섬유와 표백한 섬유로 혼합된 것
-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다. 색실(염색하거나 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 1) 염색한 것(전체를 염색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백색으로 염색한 것과 일시적으로 염색한 것을 제외한다), 날염한 것, 염색하거나 날염한 섬유로 제조된 것
- 2)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된 섬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것,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섬유와 착색한 섬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것[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 하나 이상의 색으로 균테균테 점의 모양으로 날염한 것
- 3) 날염된 슬리버(sliver)나 로빙(roving)으로 만들어진 것
- 4)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위 규정은 제54류에 해당하는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라. 표백하지 않은 직물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염색·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

마. 표백한 직물

-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바. **염색한 직물**

-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

사.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
(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 **날염직물**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轉寫紙), 플로킹(flocking)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 머서 가공(mercerisation)은 위의 범주 내의 실이나 직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머서 가공(mercerisation)은 위의 범주 내의 실이나 직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의 라목부터 아목까지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준용한다.

자. **평직물**

직물 조직의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조직을 말한다.

2. 가.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1) 통칙 제3호에 따라 해당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데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 2) 바탕천의 표면에 파일(pile)이나 고리(loop)가 조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바탕천은 고려하지 않는다
- 3) 제5810호의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에서는 바탕천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자수사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총설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업의 원료(견·양모·면·인조섬유 등)·반제품(실과 직물류)과 이것으로 제조된 제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제11부의 주 제1호와 이 부에 속하는 특정의 류의 주나 각 류의 각 호에 대한 해설에서 규정된 특정의 수많은 재료와 물품은 **제외한다**. 특히 다음의 것은 제11부에 **분류하지 않는다**.

- (a) 사람머리카락이나 그 제품(일반적으로 **제0501호·제6703호·제6704호**). 그러나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종류의 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제5911호**)는 이 부에 **포함한다**.
- (b) 석면섬유와 그 제품(실·섬유·의류 등)(**제2524호·제6812호와 제6813호**)
- (c) 탄소섬유와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 : non-metallic) 광물성 섬유[예: 탄화규소, 암면(rock wool)]과 이들 섬유의 제품(**제68류**)
- (d) 유리섬유·유리실·유리직물과 이들의 제품이나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복합품으로서 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제70류** 참조). 그러나 투시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이 부에 **포함한다**.

제11부는 14개의 류로 구분되며 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제50류~제55류)은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두 번째 부분(제56류~63류)은 4단위 호의 단계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물품을 분류한다(제5809호와 제5902호는 제외한다).

(I)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이나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를 단독으로나 혼합하여 직물(총설(1)(C)에 규정과 같이)로 된 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을 분류한다. 대부분의 경우 원료, 웨이스트(waste)를 재생한 섬유[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하며 섬유를 뽑아 내지 않은(unpulled)된 낭마는 **제외한다**], 슬리버(sliver), 로빙(roving) 모양의 카드(card)나 코움(comb)한 섬유, 실과 직물을 분류한다.

(A) 이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
(제11부의 주 제2호 참조)

제50류부터 제55류[웨이스트(waste)·실·직물 등]까지나 제5809호, 제5902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방직용 섬유재료는 다음의 과정에서 혼합될 수 있다

- 방적 이전의 단계나 방적 과정(during spinning)
- 꼬임 과정(during twisting)
- 직조 과정(during weaving)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구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제,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은 물품의 전체를 고려, 품목분류 하는데 있어서 직물 내에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은 방직용 섬유재료와 비(非) 섬유재료로 구성된 혼합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데 **다만**,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방직용 섬유의 물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어떤 류나 어떤 호에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들은 다른 재료와 혼합된 재료를 포함한 유사물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모두 합쳐져야 한다.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하고, **그 다음**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에 분류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례 :

(a) 제직된 직물 중 구성성분비율이

- 전 중량에서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40%,
- 코움(comb)한 양모의 중량이 35%,
- 코움(comb)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중량이 25%인 것은

제5515호(그 밖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에 분류하지 않고 **제5112호**[코움(comb)한 양모나 코움(comb)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직물]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본 사례의 경우 양모와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중량의 비율을 합산하여야하기 때문이다.

(b) 제직된 중량이 210g/m²인 직물 중 구성성분비율이

- 전 중량에 면의 중량이 4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30%,
-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30%인 것은

제5211호(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200g/m²을 초과하는 면직물)나, 제5514호(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이고,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170g/m²을 초과하는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에 분류하지 않고, **제5516호**(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에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먼저 관련 류(본 사례의 경우 합성스테이플 섬유와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관련 류는 제55류가 된다)를 결정하고 다음에 그 결정된 류 안에서 해당 호인 제5516호(본 사례의 경우 여러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결정한다.

(c) 제직된 직물 중 구성성분비율이

- 전 중량에서 아마의 중량이 35%,
- 황마의 중량이 25%,
- 면의 중량이 40%인 것은

제5212호(그 밖의 면직물)에 분류하지 않고 **제5309호**(아마직물)에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먼저 관련 류(본 사례의 경우 아마와 황마를 합해야 하므로 관련 류는 제53류가 된다)를 결정하고 다음에 결정된 류 안에서 해당 호인 **제5309호**(아마의 중량이 황마의 중량을 초과하며 제11부의 주 제2호나목 2)에 따라 면의 함유량은 고려하지 않으므로)를 결정한다.

- (2)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과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 (3) 직물의 분류상 금속사(metal thread)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 (4)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

사례 :

제직된 직물 중 구성성분비율이 전 중량에서 합성필라멘트의 중량이 35%,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25%,
코움(comb)한 양모의 중량이 40%인 것은

제5112호(코움(comb)한 양모로 만든 직물)에 분류하지 않고 **제5407호**(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본 사례의 경우 합성필라멘트의 중량과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의 비율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5) 또한 사이징(sizing)이나 드레싱(dressing) 가공제[예: 견의 경우에 첨가하는 증량가공제 (weighting : loading)]와 침투(impregnation)용·도포(coating)용·피복(covering)용·시드(sheathing)용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에 결합된 물품은 비방직용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방직용 섬유의 중량은 제시된 상태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혼방 물품이 **주로** 특정 방직용 섬유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혼방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각 재료별들 중에서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 재료에 대하여 우선 고려한다.

사례 :

전체 중 제직된 중량이 200g/m² 이하인 직물 중 구성성분 비율이 면의 중량이 55%,
인조섬유의 중량이 22%,
양모의 중량이 21%,
견의 중량이 2%인 것은

제5212호(그 밖의 면직물)에 해당되지 않고 **제5210호**(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이며,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200g/m² 이하의 것)에 분류한다.

(B) 실(yarn)

(1) 총설

방직용 섬유사(textile yarn)에는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가 있다. 이 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i) **단사(single yarn)**란 다음과 같은 실로 구성된 것을

(a)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 spun yarn ; 또는**)

(b) 제5402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한 가닥의 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나 제5402호나 제5403호의 두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실(꼬았는지에 상관 없다)[**(장(長)사 : continuous yarn)**]

(ii) **복합사(multiple yarn)(연합사 : folded yarn)**란 둘 이상의 단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모노필라멘트로부터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를 1회의 연합조작으로 꼬은 실(이연합사, 삼연합사, 사연합사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제5402호나 제5403호의 모노필라멘트로만을 꼬아서 합친 복합사(연합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복합사(연합사)의 **가닥**["겹(fold)"]이라는 말은 복합사(연합사)를 구성하는 개개의 단사를 의미한다.

(iii) **케이블사(cabled yarn)**란 둘 이상의 실(적어도 하나의 실이 복합사(연합사)인 경우)을 1회 이상의 연합조작으로 서로 꼬은 것을 말한다.

케이블사에서 **가닥(ply)**["겹(fold)"]이라는 말은 케이블사를 구성하는 개개의 단사나 복합사(연합사)를 의미한다.

위의 실들이 둘 이상의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병렬(나란히 붙인 것)하여 만들어지는 경우 때때로 **복합권사(조합사)[multiple wound(asmbed) yarn]**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구성하는 실의 종류에 따라서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 취급된다.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는 일정한 간격으로 루프(loop)나 슬리버(silver)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부클레사(bouclé yarn)**나 **루프사(looped yarn)**, **슬리브사(slub yarn)**나 **플라메사(flammé yarn)**]. 이들은 둘 이상의 실로 구성되며, 그 중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스스로 접혀있어 루프나 부풀어오른 효과를 줄 수 있다.

광택 가공한(polished) 실이나 **윤택 가공한(glazed) 실**은 천연 물질(왁스·파라핀 등)이나 합성 물질(특히 아크릴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 처리된 후 광택용 롤러로서 광택나게 한 실이다.

실은 측정방법에 따라서 표시되며 측정방법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에서는 선밀도의 표시단위인 "텍스(tex)"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필라멘트·섬유나 그 밖의 섬유가닥 1km의 선을 그램 중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1 데시텍스는 0.1 텍스이다. 미터식 변수를 데시텍스로 환산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공식이 적용된다.

$$\frac{10,000}{\text{미터식변수}} = \text{데시텍스}$$

실(yarn)은 표백하지 않은 실·세정한 실·표백한 실·크림처리한 실·염색한 실·날염한 실·반점염색한 실 등이 있다. 또한 모소처리한(毛燒 : gassed) 실(즉, 표면에 보풀이 일고 있는 섬유를 제거한 실)·머서화 가공한(mercerised) 실(즉, 장력을 준 상태에서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한 것)·기름처리한(oiled) 실 등이 있다.

다만,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5604호**의 고무실, 피복된 방직용 섬유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침지한 것을 포함한다)·도포(塗布)·피복·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사
- (b)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 (c) 짐프사(gimped yarn), 셔닐사(chenille yarn)과 루프 웨일사(loop wale-yarn)(**제5606호**)
- (d) 짚(braided) 방직용 섬유사(경우에 따라 **제5607호**나 **제5808호**)
- (e) 금속사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사(**제5607호**)
- (f) 실, 모노필라멘트, 방직용 섬유를 나란히 놓고 접착제로 접착시킨 것(볼덕)(**제5806호**)
- (g) 방직용 섬유사를 나란히 놓고 고무로 응결시킨 방직용 섬유사(**제5906호**)

(2)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분류하는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제5607호에 분류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제5808호의 브레이드(braid)와의 구별

(제11부의 주 제3호 참조)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에는 모든 실류를 다 분류하지는 않는다. 실류는 그의 특성에 따라 (측정방법, 광택이나 윤택가공 여부, 실의 가닥수) 실을 분류하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각 호에 분류하며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나 케이블은 제5607호에, 브레이드(braid)는 제5808호에 분류한다. 다음 표 I 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확한 분류를 표시한 것이다.

표 I

방직용 섬유의 실과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분류표

종 류(*)	분류결정상 특징	분 류
금속사로 보강한 것	모든 경우	제5607호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	모든 경우	제5605호
짐프사(gimped yarn)(제5110호와 제5605호의 것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와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모든 경우	제5606호
짚(braided) 방직용 섬유사	(1) 단단히 엮었거나 조밀한 구조로 된 것 (2) 기 타	제5607호 제5808호
그 밖의 실 : - 견과 견 웨이스트(waste)의 것(**)	(1)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2) 20,000데시텍스 초과인 것	제50류 제5607호
-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의 것	모든 경우	제51류
- 아마나 대마의 것	(1) 광택이나 윤택 가공한 것 (a) 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 (b) 1,429데시텍스 미만의 것 (2) 광택이나 윤택가공하지 않은 것 (a)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b) 20,000데시텍스 초과인 것	제5607호 제53류 제53류 제5607호

종 류(*)	분류결정상 특징	분 류
- 코이어(coir)의 것	(1) 한 가닥이나 두 가닥의 것 (2) 세 가닥 이상의 것	제5308호 제5607호
- 종이의 것	모든 경우	제5308호
- 면이나 그 밖의 식물성 섬유	(1)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2) 20,000데시텍스 초과	제52류나 제53류 제5607호
- 인조섬유의 것[제54류의 둘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된 실을 포함한다(**)]	(1) 1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2) 10,000데시텍스 초과	제54류나 제55류 제5607호

각주

(*) 이 표의 여러 가지 섬유재료에 대한 규정은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혼합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1부의 총설(I)(A) 참조).

(**)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gut),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와 꼬임이 없거나 1미터당 5회 미만 꼬임의 멀티필라멘트나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의 토우(tow)는 어떤 경우에도 제5607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3) 소매용으로 된 실

(제11부의 주 제4호 참조)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의 호 중 특정 호는 소매용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 실은 다음 표 II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실은 소매용으로 된 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 (a) 견·견 웨이스트(waste)·면이나 인조섬유의 단사(어떤 포장이라도 상관없다)
- (b)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단사 중 표백·염색이나 날염한 것으로서 5,000데시텍스 이하의 것(어떤 포장이라도 상관없다)
- (c) 견·견 웨이스트(waste)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것(어떤 포장이라도 상관없다)
- (d) 면이나 인조섬유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서 타래로 묶은 것
- (e)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염색이나 날염한 것으로서 133 데시텍스 이하의 것
- (f) 여러 가지 방직용 섬유의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크로스릴(cross-reel) 모양의 타래로 감은 것(*)
- (g) 여러 가지 방직용 섬유의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실패(내부 지지물)[예: 콕(cop)·연사(撚絲)용 튜브·핀(pirn)·원추형 보빈(bobbin)이나 스핀들(spindle)]에 감겨있는 것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감겨 있는 것(예: 누에고치 모양으로 감은 자수직기용의 것으로서 자수직기에 사용되는 것, 원심식 방사기로 만든 케이크)(섬유공업에서의 그 용도가 표시되는 것)

*
* *

각주

(*) 크로스릴(cross-reeling)은 실타래가 헝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을 대각선 상태로 타래를 감는 방법으로서 보통 타래 염색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크로스릴링하지 않은 것"



"크로스릴링한 것"



표 II

소매용으로 된 실(위의 제외규정은 예외로 한다)

포장 방법	실의 종류 (*)	실이 소매용 포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
카드(card)·릴·튜브나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것	(1)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 필라멘트사 (2) 양모사·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면사·인조스테이플사	실패를 포함한 중량이 85g 이하의 것 실패를 포함한 중량이 125g 이하의 것
공(ball) 모양이나 타래 모양으로 감은 것	(1) 인조필라멘트사(3,000데시텍스 미만의 것)·견사나 견웨이스트사 (2) 그 밖의 실(2,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3) 그 밖의 실	중량이 85g 이하의 것 중량이 125g 이하의 것 중량이 500g 이하의 것
타래 모양으로 감은 것 [간사(dividing thread)에 의하여 분리되는 여러 개의 독립된 작은 타래로 구성된 것](**)	(1)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 필라멘트사 (2) 양모사·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면사·인조스테이플 섬유사	개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균일하게 85g 이하의 것 개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균일하게 125g 이하의 것

각주

- (*) 이 표의 여러 가지 섬유재료에 대한 규정은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는 혼합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1부의 총설 I(A) 참조).
- (**) 연속된 긴 실로서, 분리될 수 있게 작은 타래로 묶어 이 작은 여러 개의 타래를 합쳐서 끝 타래로 묶으며 일정한 곳을 묶은 하나 이상의 간사(dividing thread)를 절단하면 쉽게 작은 타래로 분리되는 것도 있다. 하나 이상의 간사가 서로 독립하면서 타래 사이를 통과한다. 때에 따라서 타래를 종이 밴드로 묶는 경우도 있다. 일련의 연속사로서 큰 타래를 감어 놓은 것으로서 간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간사에 의하여 균일한 중량의 작은 타래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중에(예: 염색) 형클어 지는 것을 단순히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는 큰 타래(하나 이상의 간사에 의해 분리되는 여러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된 것)로 간주하지 않으며 또한 소매용 포장으로 된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는다.

(4) 재봉사(sewing thread)

(제11부의 주 제5호 참조)

제5204호 · 제5401호 · 제5508호에서 “재봉사(sewing thread)”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 (a) 실패[예: 릴(reel) · 튜브(tube)]에 감은 실로서 한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000g 이하의 것
- (b) 재봉사로 사용하는 드레스한 실
- (c) 최종 꼬임이 “Z” 인 실

“드레스한 것(dressed)”이란 완성 가공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리는 예를 들면, 윤활 성질이나 열 저항력의 부여, 정전기 형성의 방지나 외관을 개선함으로써 방직용 섬유사를 재봉사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한다. 이러한 처리는 실리콘 · 전분 · 왁스 · 파라핀 등을 기본 재료로 한 물질의 사용을 포함한다.

재봉사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실패에 감긴 상태로 알 수 있다.



(5) 강력사(high tenacity yarn)

(제11부의 주 제6호 참조)

제54류와 제59류에는 “강력사(high tenacity yarn)”와 강력사로 만든 직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부에서 “강력사(high tenacity yarn)”란 cN/tex(센티뉴턴 퍼 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에 열거한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의 단사	60cN/tex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3cN/tex
비스코스레이온 단사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27cN/tex

(6) 탄성사(elastomeric yarn)와 텍스처드사(textured yarn)

(제11부의 주 제13호 참조)

탄성사에 대해서는 제11부의 주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의 주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텍스처드사는 소호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의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다.

(C) 직물(woven fabric)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에 분류하는 **직물**은 방직용 섬유사[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분류하는 실과 제5607호의 끈, 배의 밧줄(cordage) 등], 로빙(roving),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세폭리본, 브레이드(braid), 세폭(細幅 : narrow)직물[위사(緯絲 : weft)없이 경사(經絲 : warp)로만 접착시켜 구성된 것 등]을 경사(經絲)직기와 위사(緯絲)직기에서 교차시킴으로써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직물이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

- (a)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바닥깔개(제57류)
- (b) **제5801호**의 파일(pile) 직물이나 셔닐(chenille) 직물, **제5802호**의 테리타월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 직물, **제5803호**의 거즈, **제5805호**의 테피스트리(tapestry), **제5806호**의 세폭(細幅 : narrow) 직물과 **제5809호**의 금속사·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 사용하여 제작한 직물
- (c) **제5901호**와 **제5903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도포(塗布)·침투 등으로 처리된 직물류 ; **제5902호**의 타이어코드직물이나 **제5911호**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직물
- (d) 제11부의 주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된 물품(총설(II) 참조)

위 (a)부터 (d)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에는 제11부의 주 제9호의 적용에 의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직물류를 포함한다.

- 병렬시킨 경사(經絲)의 한 층에 병렬시킨 위사(緯絲)의 층을 예각이나 직각으로 겹붙쳐 놓은 것 ;
- 병렬시킨 경사(經絲)의 두 층 사이에 위사층을 예각이나 직각으로 삽입시킨 것

이와 같은 직물은 일반직물의 경우와 같이 짜여 지지 않고 교차점을 접착제로 접착하거나 열 용융(鎔融)에 의하여 고착시킨 것이 주요 특색이다.

이들 직물은 때때로 **망목 직물(mesh scrim)**로 호칭되는 것이 있는데 ; 용도는 다른 재료의 보강(플라스틱·종이 등)이나 농산물 보호 등에 사용한다.

제50류에서 제55류의 직물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정련한 것·표백한 것·염색한 것·서로 다른 색실로 제작한 것·날염한 것·흐림처리(clouded)한 것·머서 가공한 것·광택가공(glazed)한 것·물결무늬로 한 것(moiré)·레이즈한 것(보풀을 세운 것)·주름을 낸 것·축융가공(fulled)한 것·모소[毛燒 : gassed(singed)]한 것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그림이 들었거나 들어 있지 않은 직물이 포함되며, 제작 중에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로 만들어지는 도안이 들어있는 브로세(broché) 직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직물은 자수직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50류에서 제55류에는 도안효과를 경사(經絲)·위사(緯絲) 모두가 있는 곳에 나타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위사를 용융(鎔融 : fused)시킨 직물을 포함한다[예: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경사(經絲)·아세테이트레이온의 위사(緯絲)를 사용한 것으로서 용제(solvent)로 위사(緯絲)를 부분적으로 제거한 특정 직물].



[소호해설]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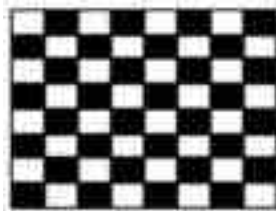
전부나 일부가 서로 다른 색으로 날염한 실이나 동일 색채의 서로 다른 색조로 날염한 실로 구성되어 있는 직물은 “염색 직물(dyed woven fabric)”이나 “날염 직물(printed woven fabric)”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woven fabric of yarn of different colour)”로 간주한다.

제직(weave)

평직물(plain weave)이란 제11부의 소호 주 제1호 자목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직물조직의 각각의 위사(緯絲)가 연속된 경사(經絲)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經絲)가 연속된 위사(緯絲)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옷감구조”를 말한다.

이런 제직의 무늬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직물



평직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물의 제직 방법이다. 평직물의 각 표면 상에 경사(經絲)와 위사(緯絲)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직물의 양 표면은 항상 동일하다(양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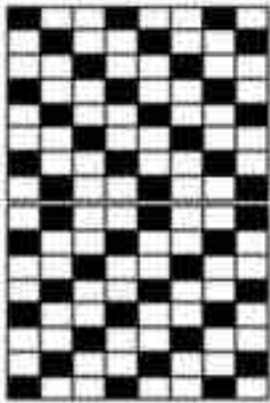
능직(twill weave)에는 첫 번째 위사(pick)가 첫 번째 경사(end)를 묶고 두 번째 위사(緯絲)가 두 번째 경사(經絲)를 묶으며, 세 번째 위사(緯絲)가 세 번째 경사(經絲)를 묶는 등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직조된다. 이런 종류의 제직의 단계 수는 위사(緯絲)와 경사(經絲)의 짜방향에 대해 하나이다. 반복적인 제직, 즉 무늬를 반복 하는데 필요한 경사(經絲)의 수와 위사(緯絲)의 수는 항상 3 이상이다. 가장 밀도가 높은 능직의 경우에는 위사(緯絲)가 2올의 경사(經絲) 위를 통과하는데(float) 이것이 3올 능직이다. 4올의 능직의 경우에는 위사(緯絲)가 3올 경사(經絲) 위를 통과한다.

능직에 있어서는 계단식의 실의 교차점으로 이루어진 두둑(rib) 사선이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뻗어 능선을 형성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직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두둑(rib)은 우측에서 좌로 진행하거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경능직과 위능직은 전자는 위사(緯絲)가 더 뚜렷하며, 후자는 경사(經絲)가 더 뚜렷한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두 능직은 정면(the right side)과 후면(the wrong side)이 서로 서로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면의 외관이 똑같은 양면능직(double-faced twill)이나 파사문직(cross twill)이라고 일컫는 능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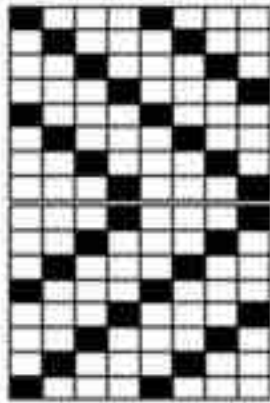
제11부

양면능직이나 과사문직은 항상 같은 모양의 제직방법이 반복된 직물이다. 경플로트(warp float)나 위플로트(weft float)는 양면이 같으며 ; 다만, 두둑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을 뿐이다. 가장 간단한 무늬는 4올의 과사문직의 것으로서 각 경사(經絲)는 2개의 위사(緯絲)의 위와 밑을 연속하여 통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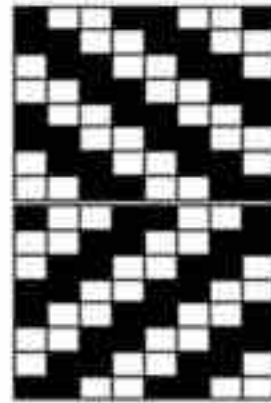
제5208호 · 제5209호 · 제5210호 · 제5211호 · 제5513호 · 제5514호에서 3올이나 4올의 능직(양면능직과 과사문직을 포함한다)에 관한 소호에는 이들의 한정적인 용어표현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제직무늬의 능직물(綾織物: twill)만을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3올 능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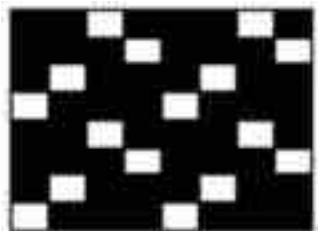


4올 능직



4올 양면능직이나 과사문직

그러나 소호 제5209.42호와 제5211.42호의 데님 직물(denim fabric)에는 이들 소호가 경사 표면의 직물만을 분류하므로(제52류 소호 주 제1호 참조) 4올 양면능직이나 과사문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사 표면의 3올 능직과 경사 표면의 4올 능직 이외에 이들 소호에는 또한 제직 무늬가 아래와 같은 경사 표면의 4올 과사문직도 분류한다.



경사표면의 4올 과사문직

(II) 제56류에서 제63류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분류하지 않는 특정한 종류의 방직용 섬유 직물류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을 분류한다[예: 파일(pile) 직물 · 세폭(細幅: narrow) 직물 ; 제5606호나 제5808호의 셔닐사(chenille yarn) · 짐프사(gimped yarn) · 브레이드(braid) · 거룬(galloon)과 그 밖의 트리밍(trimmings) ; 튜(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 레이스 ;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에 자수한 자수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또한 여기에는 섬유 제품으로 된 것을 포함하며, 제11부의 이외의 다른 부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 :

이 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제품으로 된 것(made up)”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 (1)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드레스패턴(dress pattern), 직물의 변을 물결무늬 모양으로 절단된 것[예: 특정의 더스터(duster)]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
- (2) 봉제나 그 밖의 가공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dividing thread)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종류의 물품에는 일정한 모양으로 직접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직된 물품과 특정의 더스터(duster)·타월·탁상보·스카프·모포 등으로서 직조되지 않고 남은 경사(經絲)가 그대로 있거나 위사(緯絲)의 끝을 술 fringe) 모양으로 절단한 것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직기상에서 1매 1매씩 분리하여 제작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중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제작되지 않은 대(band) 모양[일반적으로 경사(經絲)]으로 된 긴 직물을 단순히 절단하여 얻은 것도 있다. 간사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제품으로 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긴 직물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 fringe) 장식의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물건이 접혔거나 소매용 등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테를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단락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절단이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
- (4)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 fringe)을 댄 물품**[실을 첨가하여 짜 넣은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예: 가장자리를 감친 손수건과 가장자리에 결절술 fringe)을 단 탁상 포]. 그러나 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5) **일정한 형태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 한 것.**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란 제작한 후에 더 이상의 가공(예: 자수에 의한)을 하지 않고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발취(추려 빼는 것)하는 간단한 가공을 말한다. 이와 같이 처리한 직물은 부인용의 내의(란제리)를 제조하는데 가끔 사용한다.
- (6) **봉제·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 붙인 물품.** 이와 같은 물품은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의류를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두가지 이상의 동일 종류의 직물류로서 끝과 끝을 길이 방향으로 이어 붙인 것이나 두가지 이상의 직물을 적층한 것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박음질(stitching)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원단상의 것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 (7)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소호해설]

표면에 파일이나 루프를 가지고 있는 제56류부터 63류까지의 물품

제11부의 소호 주 제2호나목2)의 규정은 파일(file)이나 루프(loop)를 가지고 있는 표면 쪽의 바탕천이 일부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III)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물품

이 부의 주 제10호에 따라 고무실(rubber thread)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탄성물품은 제11부에 분류한다.

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고무실과 고무끈은 제5604호에 분류하며,

고무실과 결합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물품은 경우에 따라 특히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부터 제63류까지로 분류한다.

(IV) 화학적·기계적·전자적 구성요소를 장착한 방직용 섬유제품

이 부의 주 제15호에서, 방직용 섬유·의류·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서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화학적·기계적·전자적 구성요소를 장착한 것은 제11부에 분류한다(불박이로 된 것이든 섬유나 직물 내에 결합된 것이든 상관없다). **다만**, 이들이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이 방직용 섬유제품은 착용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예:

- 의류로서, LED 조명이나 오디오 장치 또는 둘 다를 결합한 것
- 의류로서, 헤드폰[휴대폰용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이나 이와 비슷한 장치를 포함한다]을 결합한 것
- 의류로서, 신체 기능 모니터링 장비[예: 심박수와 체온의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스포츠 브레지어]를 결합한 것
- 양탄자로서, 압력이나 움직임 감지 기능(사람의 넘어짐 감지나 쓰러짐 감지)이 있는 것
- 발열 장갑이나 발열 양말
- 내진(耐震)벽지[때때로 "지진용 벽지(seismic wallpaper)"라고도 한다]로서, 광학 센서나 광섬유와 같은 전자 부품을 결합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과 수리 과정에서 건축구조물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것; 그리고
- 토목섬유(geotextile)로서, 예를 들어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변형(deformation and strain)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결합하거나 광섬유를 완전히 결합한 것

(V) 방직용 섬유의 조절(conditioning)과 시험(testing)을 위한 표준상태(standard atmosphere)**(A) 적용범위**

방직용 섬유의 물리적·기계적 성질을 조절(conditioning)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표준상태(standard atmosphere)의 특징과 이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B) 정의

- (a)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 공기 중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압과 동일온도에서의 포화증기압과의 비를 말하며, 보통 백분율로 표시한다.
- (b) **표준온습상태(standard temperate atmosphere)** : 상대습도가 65%이고, 온도가 섭씨 20℃인 공기를 말한다.

(c) **시험실의 표준온습상태(standard temperate atmosphere for testing)** : 상대습도가 65%이고, 온도가 섭씨 20℃인 공기를 말한다.

주: 위에서 사용한 형용사 “온습의(temperate)” 라는 용어는 섬유산업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선택한 것이다.

(C) **예비조절(pre-conditioning)**

방직용 섬유의 측정조건 설정 전에 예비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섬유가 상대습도 10%에서 25% 사이, 온도가 섭씨 50℃이하인 공기에서 거의 평형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상대습도 65%, 온도가 섭씨 20℃의 공기를 거의 섭씨 50℃까지 공기를 가열함으로써 얻어진다.

(D) **조절(conditioning)**

어떤 방직용 섬유에 대한 물리적·기계적 성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에 앞서 그 방직용 섬유를 표준 온습상태에 놓고 공기가 그 섬유에 자유롭게 통기되도록 필요한 시간동안 공기와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별도의 시험방법을 열거하지 않는 한 이동하고 있는 공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 섬유를 2시간 간격마다 계속하여 중량을 재었을 때의 점진적인 중량 변화가 0.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직용 섬유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E) **시험(testing)**

습식시험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에 대한 물리적·기계적 시험은 시험을 위한 표준온습상태에서의 조절된 상태에서 수행한다.

제 50 류

견

총설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서 “견(silk)”이란 *Bombyx mori* (뽕을 먹는 누에)가 분비하는 섬유질뿐 아니라 야잠견(wild silk)으로 알려진 그 밖의 다른 유사한 곤충(예: *Bombyx textor*)이 분비하는 섬유질을 포함한다. 누에 유충이 사람의 손으로 사육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야생 누에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크(oak) 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이며, 이것에서 얻는 것이 참나무산누에(tussah)견이다. 이 류에는 거미견(spider silk)과 해양견(marine silk)이나 비서스실크(byssus silk)(암석에 붙은 피나(*Pinna*)과 조개류에서 얻은 필라멘트)도 역시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료로부터 직물에 이르기까지 각 제조공정의 견(견으로 분류하는 혼합 방직용 섬유의 재료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누에의 거트(silk-worm gut)도 포함한다.

50.01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5002호에 분류하는 생사를 뽑을 수 있는 누에고치만을 분류하며 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는 누에고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003호)**.

고치(silk worm cocoon)는 보통 백색과 담황색이며 때로는 담녹색의 것도 있다.

50.02 -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생사는 누에고치로부터 필라멘트를 뽑아서 얻는다. 실제에 있어서는 고치를 형성하는 필라멘트 (bave)는 대단히 가느다랗기 때문에 생사는 뽑는 공정에서 여러 가닥의 필라멘트(보통 4가닥~20가닥)를 합침으로써 얻어지며 ; 여러 가닥의 필라멘트는 뽑는 공정 중에 서로 접촉된다. 그 이유는 교질물질[세리신(sericin)]이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사는 뽑는 과정에서 교질물질이 덩글게 덮여져 있으며 이러한 교질물질은 과잉의 수분 배출을 돕고 각 필라멘트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여 주며 생사가 균일한 구조와 단면을 이루게 하는데 ;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로 다소 꼬임을 가진 필라멘트가 생산되는 때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이때의 생사는 꼬임이 아주 적으며 이것은 **제5004호**의 단연사(single thrown yarn)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사는 보통 백색·담황색이나 때로는 담녹색이다. 이 호에는 탈색한 것(즉, 뜨거운 비눗물· 묽은 알칼리 용액 등으로 교질물질을 제거한 것)과 염색한 것을 포함하며 견연(絹撚)한 것을 제외한다. 생사는 보통 길이 방향으로 원추형의 보빈(bobbin)에 감거나 여러 종류의 중량 단위의 타래로 만들며 헐겁게 묶는다.

이 호에서 견연사(絹撚絲 : thrown silk)는 제외한다(**제5004호**).

50.03 -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견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한다. 즉, 가공되지 않은 섬유 상태에서부터 실로 제조되기 전까지의 각 단계의 모든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A) 원료로부터 얻어지는 견 웨이스트, 즉 :

- 1) **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 필라멘트가 파쇄된 고치로서 구멍이 뚫렸거나 찢어진 고치[나방(蛾 : moth) 자신에 의하여 뚫렸거나 기생충이나 다른 사고에 의해서 손상된 것] ; 아직 필라멘트가 절단되지 않았으나 뽑는 공정에서 손상된 부분이 절단될 정도로 대단히 손상된 고치 ; 번데기 유무에 상관없이 오염된 고치 등
- 2) **블레이즈(blaze)** : 누에가 고치를 나뭇가지에 고정하기 위하여 고치의 둘레에 필라멘트를 엉성하게 하여 견망(silky network)과 같이 만든 것이며 ; 이 블레이즈에는 나무줄기나 나뭇잎이 혼입(混入)되는 때도 있다.

(B) 뽑는 공정(reeling process)에서 얻은 견 웨이스트, 특히

- 1) **생피저(frison)[푼사(floss silk)]** : 이것은 고치의 외부를 형성하는 조잡한 실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뽑기에 적합한 것을 남기기 위해 먼저 작은 솔로 고치의 표면을 벗기고 잘라낸 것이다. 이것은 실들이 얽힌 공 모양이나 덩어리로 만들어서 시장에 거래한다.
- 2) 뽑는 과정에서 흠을 발견하여 제거한 **누에고치**[때로는 “배시네(bassiné)”라고 부른다]
- 3) **“펠레트(pelette)”**이나 **“텔레트(telette)”**(즉, 누에고치의 내부를 구성하면서 뽑기가 불가능한 실의 부분으로서 번데기를 덮어 싸고 있다)와 **펠레드(pelade)[“펠레트(pelette)”**를 따뜻한 물에 담근 후에 번데기를 제거하고 건조시켜 얻어진다)

(C) 절단되거나 매듭져 있는 실, 섬유나 실이 엉크러진 덩어리 : 이것은 견연(絹撚 : throwing)공정 · 뽑는 공정(reeling process) · 제직 공정(weaving process) 중에서 웨이스트(waste)로 얻어진다.

(D) 견 웨이스트를 탈색하고 코움(comb)하여 얻은 물품(어떤 나라에서는 “**결방사(schappe)**”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다소 평행한 섬유로 된 시트(sheet) 모양이나 랩(lap)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공정에서 좁은 스트립(strip)모양, 토투(tow)나 로프모양[슬리버(silver)나 로빙(roving)의 형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것으로서 아직 방적사로 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포함한다. 또한 거의 단사와 같은 정도로 두께가 가늘게 견신되어 보통 약간 꼬아진(twisted) 로빙(roving)도 포함한다. 이 로빙은 **제5005호**의 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 견 노일(noil silk)

견 노일(noil silk)은 앞에서 설명한 (D)에서 설명한 견 웨이스트(waste)의 코움공정에서 제거된 잔유물이다. 이 잔여물은 앞에서 설명한 (D)의 견 웨이스트보다 열등품(저질품)으로 섬유장이 아주 짧으므로 더 이상 코움(comb)은 할 수 없으나 카드(card)는 할 수 있어 여러 가지의 그 밖의 방적준비 공정의 대상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얻은 견 노일로서 아직 방적사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F) 코밍 견 웨이스트(combings)

이것은 견 노일의 카드(card) 공정에서 제거된 짧은 섬유이다.

(G) 가닛스톡(garnetted stock)

이것은 견직물이나 견제품의 낭마,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을 섬유 상태로 찢어서(tearing) 얻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워딩(wadding)(**제3005호**나 **제5601호**)
- (b) 견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제5601호**)
- (c) 견으로 된 낭마(**제63류**)

50.04 -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5002호에 해당하는 생사를 꼬아서(한 가닥만을 꼬거나 두 가닥이나 그 이상을 함께 꼰 것) 제조하는 견연사(thrown silk)를 분류한다.

그러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제5006호)과 끈·배의 밧줄(cordage) 등의 정의에 적합한 것(제5607호)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I)(B)(2)과 (3) 참조).

이 호의 견사는 장섬유(continuous fibre)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 호의 견 웨이스트(waste)로 방직한 실과 다르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 (1) **단사(single yarn)**[때로는 **포일(poil)사**로도 알려져 있다] : 한 가닥의 생사를 꼬아서 얻어진다. 꼬임을 많이 한 것을 때로는 **크레이프 프왈(crêpe poil)**·**무슬린(mousseline)**·**쉬퐁 트위스트(chiffon twist)**라고 부르기도 한다.
- (2) **트램(tram)사** : 두 가닥 이상의 꼬지 않은 생사를 가지고 꼬임을 적게 준 것으로서 ; 견 직물의 위사(緯絲)로 사용한다.
- (3) **“크레이프 트위스트(crêpe twist)”** : 일반적으로 꼬임을 많이 준 트램(hard-twisted tram)사이다.
- (4) **오르간진사(organzine yarn)** : 꼬임을 많이 한 두 가닥이나 그 이상의 생사를 꼬아 한 가닥의 실로 만든 것이다. **그레나딘(grenadine)사**는 오르간진사를 더욱 많이 꼰 실이다. 이것은 주로 경사(經絲)로 사용한다.

이상의 모든 실은 탈색한 것과 완성 가공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제5604호의 견으로 만든 모조 캣거트(imitation catgut)를 제외한다.

50.05 -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5003호의 견 노일(noil silk)이나 그 밖의 견 웨이스트(waste)를 방적하여 생산한 단사(single yarn)를 분류하며 또한 이 호에는 단사로 만든 복합사(연합사)도 분류한다.

그러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제5006호)이나 끈·배의 밧줄(cordage) 등의 정의에 적합한 것(제5607호)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 (I)(B)(2)와 (3) 참조).

(A) 견 노일 이외의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견 노일 이외의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는 앞 호의 견사와는 달리 단섬유(discontinuous fibre)로 방적한 것이다. 이 단섬유는 길이가 약 20cm 정도이고 실 중의 견 섬유는 완전히 평행하게 병렬되어서 실의 표면이 견 특유의 매끈(평활)하고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견방사의 특성은 견 노일로 만든 견방사와 용이하게 구별된다.

(B) 견 노일로 만든 견방사

견 노일로 만든 견방사는 다른 견 웨이스트로 방적한 견방사보다 품질이 많이 떨어지며 ; 이 견방사는 보통 5cm 미만의 균일하지 않은 섬유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 이 섬유는 단순히 카드(card)되었을 뿐이며 코움(comb)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 중에 약간 얽혀 있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조그마한 매듭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견 노일로 만든 견방사는 그 밖의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보다 강력성과 균질성이 떨어지며 또한 실의 표면이 매끈한 광택이 없다.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I)(B)(1)의 설명과 같은 공정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5604호의 견으로 만든 모조 캣거트(imitation catgut)를 제외한다.

50.06 -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A) 전 웨이스트로 제조한 견사·견방사

이 호에는 제5004호와 제5005호의 실로서 소매용 포장을 한 것, 즉, 제11부의 총설 (I)(B)(3)에 설명한 조건에 적합한 포장 상태의 것을 분류한다.

(B) 누에의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누에가 고치를 방출할 정도로 성숙한 단계에 있을 때 누에를 묶은 초산용액에 침지하여 죽인 후 누에로부터 견사를 추출하여 잡아당겨 얻는다. 이 누에의 거트는 잘 굽혀지지 않고 말의 털보다 광택이 없으며 길이가 50cm 초과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살균한 누에의 거트(**제3006호**)
- (b) **제5604호**의 견으로 만든 모조 캣거트(imitation catgut)
- (c) 누에의 거트에 낚싯바늘을 부착하거나 낚싯줄용에 적합도록 제조된 것(**제9507호**)

50.07 -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 견 노일(noil) 직물

5007.20 -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5007.90 - 그 밖의 직물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 노일·그 밖의 견 웨이스트사로 제작된 직물(제11부의 총설 (I)(C) 규정과 같은)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하부타이(羽二重 : Habutai) · 산퉁(Shantung) · 투샤(Tussore) · 그 밖의 극동아시아풍의 직물
- (2) 크레이프(crêpe)
- (3) 머슬린(muslin) · 그레나딘(grenadine) · 보일(voile)과 같은 투명한 직물
- (4) 태피터(taffeta) · 사틴(satin) · 파유(faille) · 모아레(moiré) · 다마스크(damask)와 같은 조밀하게 짜여진 직물

그러나 이 호에는 제57류부터 제59류까지의 직물을 제외한다[예: 제5911호의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소호해설]

소호 제5007.20호

소호 제5007.20호에는 견 노일(noil silk)을 제외한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인 직물만을 분류하며 ; 견 노일이 그 85%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 5 1 류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주:

1.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양모”란 양이나 어린 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 · 라마 · 비큐나(vicuna) ·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 야크 · 앙고라 · 티베탄 · 캐시미르(Kashmir)나 이와 유사한 염소(보통의 염소는 제외한다) · 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 · 산토끼 · 비버 · 뉴트리아(nutria) · 사향쥐(musk-rat)의 털을 말한다.

다. “동물의 거친 털”이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0502호)과 말의 털(제0511호)은 제외한다.

총설

이 류의 해설을 읽을 때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료로부터 직물로 제직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 · 동물의 거친 털을 분류하며, 양모나 동물의 털로 분류하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 이 류에는 또한 말의 털로 만든 실(yarn)과 직물(fabric)을 포함하나 **제0511호**의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는 **제외한다**. 제5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말의 털(horsehair)”이란 마속동물(馬屬動物)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51.01 -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 깎은 양모

5101.19 -- 기타

-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 -- 깎은 양모

5101.29 -- 기타

5101.30 - 탄화처리한 것

이 표에서 “양모(wool)”란 양이나 어린 양의 천연 섬유를 말한다. 양모 섬유는 본질적으로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유한 비늘 모양의 표면을 이루고 있다. 이 양모는 탄력성과 흡습성(공기로부터 수분흡수)이 대단히 크며 일반적으로 펠트(felt)성을 갖고 있다. 양모를 태울 때는 거의 불꽃이 없고 각질물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

이 호에는 양모나 어린양모로서 카드(card)하지 않거나 코움(comb)을 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이들은 살아있는 양이나 죽은 양의 모피에서 양모를 깎거나[깎은 양모(shorn wool)] 발효법이나 적절한 화학처리를 통하여 얻는다[예: 풀드울(pulled wool), 슬라이프울(slipe wool), 스킨울(skin wool)].

일반적으로 카드(card)나 코움(comb)되지 않은 상태의 양모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그리지(greasy)양모[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그리지(greasy) 양모 : 세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세척하지 않은 양모이므로 ; 따라서 그리지양모는 양 자체에서 분비된 지방질이 양모에 침투되어 있으며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상당량의 불순물[버어(burr)·종자·흙 등]을 함유하고 있기도 한다. 그리지 깎은 양모(greasy shorn wool)는 다소 모피와 근사한 “플리스(fleece)”의 형태인 것도 있다.

그리지 풀드 양모(greasy pulled wool)는 발효법(fermentation : “sweating”)에 의하여 면양이나 새끼양의 모피로부터 분리되며 발효 공정에서 양모와 모피는 열과 수분의 결합 작용에 의한 처리를 받는다. 또한, 이것은 황화나트륨이나 석회(lime)용액으로 가죽 안쪽을 처리하는 털을 제거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분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모는 모근이 붙어 있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다.

플리스와시(fleece-washed)한 양모 : 살아있는 양이나 죽은 양의 모피로부터 깎기 전에 찬물로 세척한 양모이다. 따라서 이것은 완전하게 세척되어 있지 않다.

그리지 양모(greasy wool)는 보통 담황색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회색·흑색·갈색·담갈색의 것도 있다.

(B) 탄화처리하지 않은 탈지양모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뜨거운 물로 세척한 양모 :** 이것은 양모를 뜨거운 물로만 세척하며 양모그리스(wool grease)와 토질 물질(earthy matter)을 대부분 제거한다.

- (2) **세정양모(scoured wool)** : 이것은 뜨거운 물에 비누나 그 밖의 세정제나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여 거의 완전하게 탈지한 양모이다.
- (3) 그리스를 제거하기 위해 **휘발성 용제**(벤젠이나 사염화탄소 등)로 **처리한 양모**
- (4) **동결된 양모(frosted wool)** : 이것은 그리스를 동결시킬 정도로 충분히 저온으로 처리한다. 동결에 의하여 그리스는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로 되어 쉽게 부스러져서 그리스에 의하여 양모에 부착되어 있는 대부분의 천연 불순물과 함께 제거된다.

세척되고 탈지된 대부분의 양모는 아직 소량의 그리스와 식물성 물질[버어(burr)·종자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 이러한 식물성 물질은 이후의 기계적 공정(제5105호 해설 참조)이나 탄화처리에 의하여 제거된다.

(C) **탄화처리한 양모**

탄화처리는 앞에서 설명한 (B)에서 설명한 양모에 아직 남아 있는 식물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양모를 무기산이나 산성 염용액에 침지처리하면 양모 섬유에는 영향 없이 식물성 물질만 파괴한다.

카드(card)나 코움(comb) 이전에 처리한 표백·염색이나 그 밖의 가공한 양모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원피(raw hide and skin)[스플릿(split) 여부에 상관없이 탈모하지 않은 양피를 포함한다](**제4102호**나 **제4301호**)
- (b) **제5103호**의 양모 웨이스트나 **제5104호**의 양모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 (c) 단편상의 코움(comb)한 양모(**제5105호**)

51.02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 -- 캐시미어 염소의 것

5102.19 -- 기타

5102.20 - 동물의 거친 털

- (1) 이 표에서 “동물의 부드러운 털(fine animal hair)”이란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양고라염소(모헤어)·티베탄·캐시미어[Kashmir(cashmere)]염소나 이와 유사한 염소·토끼(양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쥐(musk-rat)의 털을 말한다(이 류의 주 제1호나목 참조).

동물의 가는 털은 일반적으로 양모보다 부드럽고 곱슬거림이 적다.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양고라·캐시미어·이와 유사한 염소·양고라 토끼 등의 털은 일반적으로 양모의 경우와 비슷하게 실로 되며; 또한 이것은 가발 제조용이나 인형의 모발용으로 사용한다. 그 밖의 동물의 부드러운 털(즉, 산토끼·집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쥐(musk-rat)의 털)은 보통 방직용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펠트(felt)·패딩·충전물 등으로 사용한다.

- (2) 이 표에서 “동물의 거친 털(coarse animal hair)”이란 위(1)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양모(제5101호), 마속동물(馬謖動物: equine animal)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 [제0511호의 “말의 털(horsehair)”로 분류한다]·돼지털·오소리털·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털(제0502호)을 제외한다 그 밖의 모든 동물의 털을 말한다(이 류의 주 제1호 다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동물의 거친 털은 소나 마속동물의 옆구리털 그리고 염소의 털·개의 털·원숭이의 털·수달의 털을 포함한다.

동물의 거친 털은 일반적으로 조방사(coarse yarn)나 직물·펠트(felt)·양탄자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심(padding)이나 충전용으로 사용한다.

동물의 털은 털같이 된 것을 수집하거나 털깎기 하거나 원피 등에서 떼어 내는 것도 있으며, 카드(card)나 코움(comb)하지 않은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동물의 털을 수세·표백·염색·인공적인 모피처리를 한 것(인공적 모피처리는 주로 동물의 거친 털이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응용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사람 머리카락(제0501호)
- (b) 원피(raw hide and skin)와 모피(raw furskin)(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나 제4301호)
- (c)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제5103호)
- (d)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의 가넷스톡(garnetted stock)(제5104호)
- (e) 카드(card)나 코움(comb)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제5105호)
- (f) 가발용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제6703호)



[소호해설]

소호 제5102.11호

소호 제5102.11호의 “캐시미어 염소의 것[of Kashmir(cashmere) goat]”은 캐시미어 지방에서 유래한 염소 종류의 부드럽고 유연한 짧은 털(솜털 같은 양털)을 의미하나 현재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다. 이 소호에는 동물의 사육한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51.03 -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5103.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5103.3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모든 웨이스트(waste)[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를 전부 분류한다. 즉, 이 호의 웨이스트(waste)는 양모나 동물의 털을 세척 · 카드(card) · 코움(comb) · 방직 · 제직 · 편직하는 등 일련의 처리로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회수된 것이다.

이 호에 포함되는 중요한 웨이스트는 다음과 같다.

- (1) **코움(comb) · 카드(card) · 그 밖의 방직 준비공정에서 발생된 웨이스트(waste)**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코움(comb) 공정 중에 제거한 짧은 섬유로 구성된 노일(noil) [가장 중요한 웨이스트(waste)] ; 코움(comb)된 랩(lap)의 작은 웨이스트(waste) 조각인 랩과 슬리버(sliver)의 끝부분 ; 카드(card) 공정 중에 수집한 웨이스트(waste)인 버 웨이스트(burr waste)와 카드된 쇼디(carded shoddy) ; 스트리핑(strippings)으로 알려진 카드기의 롤러를 세척할 때 회수한 섬유
- (2) **실의 웨이스트(yarn waste)** : 방직 · 합사 · 조방사 · 제직 · 편직 등의 공정 중에서 발생한 웨이스트를 수집한 것으로 절단 · 매듭져 있거나 형클어진 것.
- (3) 세정기나 세정조의 밑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선별할 때 생긴 웨이스트와 세척할 때 생긴 **웨이스트**
- (4) **웨이스트**(예: 낡은 매트리스에서 회수된 동물의 털이나 양모)

이 웨이스트(waste)에는 기계에서 나온 기름이 침투된 것이나 더스트와 그 밖의 불순물(예: 식물성의 자연불순물)이 혼합된 것도 있다. 이 웨이스트는 정상과 품질에 따라 방적용이나 충전용 등으로 사용한다. 탄화처리 · 표백 · 염색 등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말의 털의 웨이스트(**제0511호**)
- (b) 워딩(wadding)(**제3005호**나 **제5601호**)
- (c) 비료용으로만 적합한 양모나 동물의 털의 웨이스트(**제31류**)
- (d)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제5104호**)
- (e) 카드(card)한 양모 · 코움(comb)한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제5105호**)
- (f) 섬유플록 · 더스트와 밀네프(mill nep)(**제5601호**)

51.04 -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이 호에는 편물이나 직물 등의 넝마를 가닛(garnetted)하거나 방직 · 제직 · 편직 등의 공정 중
에서 발생한 실의 웨이스트(waste)를 가닛하여 얻어진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 · 동물의 거친
털을 분류한다.

가닛한 양모(재생하거나 재가공한 양모)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쇼디(shoddy)와 뭉고(mungo)** : 방모사(woollen yarn)나 소모사(worsted yarn)나 넝마를
가닛한 것
- (2) **추출양모(extract wool)** : 혼방된 넝마를 보통 산(酸) 처리로 식물성 섬유(예: 면)나 재생 ·
반합성 섬유의 단섬유를 제외하고 회수한 양모를 가닛(garnetted)한 것

이 호의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보통
단일섬유로 하거나 새로운 섬유를 혼합해서 방직하며 직물 · 편물 · 펠트(felt)의 제조 · 충전용 등
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가닛스톡은 표백 · 염색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워딩(wadding)(**제3005호**나 **제5601호**)
- (b) 카드(card)한 양모 · 코움(comb)한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 · 동물의 거친 털의 가닛스톡(**제5105호**)
- (c) 섬유플록 · 더스트와 밀네프(mill nep)(**제5601호**)
- (d) 사용한 것이나 신품의 넝마로서 가닛(garnetted)하지 않은 것(**제6310호**)

51.05 -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 카드(card)한 양모

-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5105.29 -- 기타

-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 -- 캐시미어 염소의 것

5105.39 -- 기타

5105.4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방모방적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카드(card)한**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거친 털[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
- (2) “조제(preparing)”[수직으로 친 그물로 걸러내기(gilling)]나 카드(card) 공정을 거쳐 **코움(comb)한**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

카드(card)ing(특수 카드기계에 의한)의 목적은 섬유를 엉킨 것을 풀고 다소 평행하게 병렬시키며 혼입된 불순물(대부분 식물성)을 제거하는데 있다. 이때의 섬유 상태는 웹(web) 모양이다.

만약 “**방모**” **물품(“woollen” products)[즉, 카드(card)만을 한 물품]**을 만들려면 웹(web) 모양의 섬유를 길이 방향으로 여러 가닥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섬유의 응집력을 높여 방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찰하거나 말아서 슬러빙(slubbing) 형태로 만든다. 이 슬러빙(slubbing)은 보빈(bobbin)에 감아서 더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방모방적에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코움한 물품(combed products : worsted)**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즉, 한 가지 방법은 카드한 웹(web)을 코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모나 동물의 털을 카드하지 않고 코움 전에 “준비(preparing)” 공정인 길링기[길박스(gillbox)라고도 한다]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길링기에 의한 처리는 섬유를 펼쳐서 길이(장) 방향으로 섬유를 정모하는 것이다.

이후의 코움(comb)공정 과정에서 주로 노일(noil)상의 단섬유가 제거되고 잔류 섬유는 슬리버(sliver) 모양으로 평행하게 놓인다. 아직 부착되어 있는 식물성 불순물은 노일(noil)과 함께 떨어진다. 여러 가지 길이를 가진 섬유들의 완전한 혼합을 위하여 코움한 슬리버(sliver)를 드래프트하고 빗질한다. 그리하여 코움한 슬리버(combed sliver)는 둥글게 감기게 되는데, 이것을 “**톱(top)**”이라고 부르고 있다. 둥근 톱(top)상으로 만들 수 없는 재료(주로 동물의 털)는 두 개의 판지 사이에 코일상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압축 코일의 형태에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bumped top**”로 알려져 있다). 이 코움(comb)한 톱(top)은 일련의 연신과 합사 공정으로 로빙(roving)으로 제조된다. 이 로빙은 소모사 방적에 사용하도록 보빈(bobbin)에 감아 놓는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슬러빙(slubbings) · 카드(card)한 슬리버(sliver) · 톱(top) · 조방사를 분류하며 또한 일정하게 짧은 길이로 계획적으로 절단하거나 파쇄된 톱(top)과 카드한 슬리버(carded sliver)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때로는 “벌크상의 코움한 양모(combed wool in bulk)”·“정련양모(scoured deburred wool)”·“오픈톱(open top)”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련된 이러한 양모는 소모방적용 울톱(wool top)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생산 공정 기계시설(코밍기계와 카드기계) 중 한 기계시설을 사용하여 요철부분을 기계적 처리로 제거시킨 양모이다. 코밍기계를 거친 후의 연속 슬리머(continuous sliver)는 연신되며 불규칙한 솜털 모양의 단편상으로 조각이 나는데 다음에 이를 묶음으로 만든다. 이러한 물품은 짧은 길이의 섬유(평균 45mm 미만)로서 방모방적이나 면방적에는 적합하나 소모 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소모 방적 이전에 재(再) 카드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 물품은 식물성 불순물이 전혀 없는 솜털 모양의 정련된 양모와 외형이 흡사하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로빙(roving)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단사와 직경이 거의 같으며 약간의 꼬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로빙은 방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적사(정방)가 아니므로 이 호에 분류한다.

표백이나 염색 등의 가공은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워딩(wadding)(**제3005호나 제5601호**)

(b)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제조용으로 조제된 양모(**제6703호**)



[소호해설]

소호 제5105.31호

소호 제5102.11호의 해설 규정은 이 소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51.06 -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06.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이 호에는 카드(card)한[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 양모의 슬러빙(slubbings)을 방적하여 얻어진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의 방모사를 분류한다. 또한 코움사를 제조하기 위한 방적공정에서 카드(card)한 슬리버(sliver)[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얻어진 “코움-카드한 실 (combed-carded yarn)”도 포함한다. 이들 실은 보통 보빈(bobbin)이나 콘(cone)에 감겨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제5105호에 대한 해설에서 설명된 단편상의 코움(comb)한 양모에서 파생된 카드(card)한 양모사를 분류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실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I)(B)(3)의 규정 참조).

이 호의 실에서는 단섬유로 되었거나 섬유가 병렬되지 않고 서로 뒤섞여 교착상으로 되어 있는 단섬유와 장섬유의 혼합사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소모사(worsted yarn)에 비해 불규칙적이고 대개 더 적은 꼬임을 가지고 있다.

이들 실 종류에는 제11부의 총설 (I)(B)(1)에 언급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몇 가닥의 카드(card)한 양모와 코움(comb)한 양모로 만든 복합사(연합사)는 **제5106호**나 **제5107호**에 분류하는데 이 경우 카드한 양모와 코움한 양모의 중량을 비교하여, 우선하는 쪽으로 분류한다.

51.07 -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07.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이 호에는 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이 소모사[즉, 코움(comb)한 양모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얻은 것]를 분류한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실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 (I)(B)(3) 규정 참조).

소모사(worsted yarn)는 방모사와 달리 실의 표면이 곱고 균일하며 실을 구성하는 섬유는 평행하게 정돈하여 단섬유와 엉클어진 섬유는 코움(comb) 공정에서 제거한다.

이러한 실에는 제11부의 총설 (I)(B)(1)에 언급한 처리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단편상의 코움(comb)한 양모로부터 파생한 카드(card)한 양모사나 코움-카드한 양모(combed-carded yarn)(**제5106호**)를 **제외한다**.

51.08 -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 - 카드(card)한 것

5108.20 - 코움(comb)한 것

이 호에는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에 상관없이 카드(card)나 코움(comb)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로빙(roving)을 방직하여 얻은 실을 분류한다(동물의 부드러운 털에 대해 설명한 제5102호의 해설 참조).

소매용으로 포장한 실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 (I)(B)(3)]규정 참조.

이 호의 실(yarn)에는 주로 편물(編物 : knitted)제품이나 가벼운 의류(예: 알파카)용 직물·오버코트(overcoat)·모포[예: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털]·벨벳·모조 모피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실에는 제11부의 총설 (I)(B)(1)에서 언급한 처리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51.09 -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09.90 - 기타

이 호에는 소매용으로서 방모사(woollen yarn)나 소모사(worsted yarn)와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즉, 제11부의 총설 (I)(B)(3)에서 설명된 모양과 조건에 해당하는 실)을 분류한다.

51.10 -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 : 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이 동물의 거친 털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만든 실(동물의 거친 털에 대해 설명한 제5102호의 해설 참조)

이러한 실은 주로 특정의 직물·심지나 공업용의 제품에 사용한다.

- (2) **말의 털로 만든 실** : 이러한 실은 일반적으로 단섬유의 말의 털[마속 동물(馬屬動物 : equine animal)의 갈기털이나 소의 꼬리털]을 사용하여 방적함으로써 얻어진다. 마속 동물(馬屬動物)의 꼬리로부터 얻어진 장섬유의 말의 털은 방적될 수 없다. 그것들은 때때로 끝과 끝을 매듭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여 특정 말의 털 직물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경사(經絲 : warp)로 사용하는 연속적인 필라멘트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의 용도 관점에서 이러한 종류의 필라멘트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단일의 말의 털(끝과 끝이 묶여 있지 않은)은 **제0511호**에 속한다.

면(cotton)이나 다른 방직용 섬유 재료로 묶거나 짐프(gimped)한 말의 털 묶음으로 구성된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실은 제11부의 총설(I)(B)(1)에서 언급한 처리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51.11 -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5111.19 -- 기타

5111.20 -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1.30 -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1.90 - 기타

이 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나 카드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I)(C)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직물은 매우 다양하며 양복지(suiting)·플란넬(flannel)·몰통(molleton)·그 밖의 의류용 직물과 모포·실내 장식용 직물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료용 붕대·소매용의 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51.12 - 식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5112.19 -- 기타

5112.20 -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2.30 -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2.90 - 기타

이 호에는 코움(comb)한 양모나 코움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로 제직한 식물(제11부의 총설 (I)(C)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식물은 매우 다양하며 양복지(suiting)나 그 밖의 의류용 식물과 실내장식용 식물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료용 붕대나 소매용의 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식물

51.13 - 식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5102호에 포함되는 동물의 거친 털이나 제5110호의 말의 털로 만든 실로 제조한 직물(제11부의 총설 (I)(C)에 규정하는 것)을 분류한다. 그러나 말의 털로 제조한 직물은 제0511호의 말의 털(단모 : single horsehair)로 만든 것도 있다.

동물의 거친 털의 직물은 가구와 실내용품의 내장·의복의 심지 등에 사용한다.

말의 털(단모)로 만든 직물은 특수한 직기로 제직되며 보통의 경우에는 수직(手織)된다. 털의 짧은 길이 때문에(20cm부터 70cm까지) 이러한 천(말의 털로 만든 직물)은 일반적으로 작은 원단 상태이며, 주로 체(sieve)로 사용한다.

그 밖의 말의 털로 만든 직물은 주로 의복의 심지에 사용한다.

이들 호에는 **제5911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직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5 2 류

면

소호주:

1. 소호 제5209.42호와 제5211.42호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

총설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면에서 면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면섬유를 분류하며 면으로 분류하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

52.01 -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면화나무(*Gossypium*)의 면화송이(꼬투리·열매)에 담겨있는 목화씨는 면섬유로 둘러싸여 있다. 면섬유의 본질적인 조성은 셀룰로오스(cellulose)이며 왁스질로 덮여 있다. 면섬유의 외표면은 부드럽고 그 본래의 색은 백색·담황색·균일한 담갈색이나 담적색이다. 면은 성숙된 면화송이가 다소 넓게 벌어졌을 때 수확된다. 면화송이의 각지까지 따는 것이 아니고 보통 면만을 채취하며 목화씨는 이후 조면에 의하여 제거한다.

이 호에는 카드(card)와 코움(comb)을 하지 않은 수확한 면(실면)이나 단순히 조면한 것(조면에는 상당량의 면화껍지·부스러기·잎·토사 등이 아직 남아 있다)을 분류하며 또한 세정·표백·염색이나 탈지를 한 면섬유[린터(linter)와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도 포함한다.

국제무역 거래상 원면은 거의 전부 조면하여 보통 고압축한 베일(bale)로 거래된다. 개면기(opening machine)나 타면기(scutching machine)에서 깨끗하게 한 면은 폭신평신했고 연속된 넓은 시트(sheet) 모양으로 된다.

면 린터(cotton linter)는 **제14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면섬유는 섬유장이 일반적으로 1cm부터 5cm까지 정도이므로 보통 섬유장이 5mm 미만의 면 린터와는 쉽게 구분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워딩(wadding)(**제3005호**나 **제5601호**)
- (b) 면 웨이스트(waste)(**제5202호**)
- (c) 카드(card)한 면·코움(comb)한 면(**제5203호**)

52.02 -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 기타

5202.91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202.99 -- 기타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면의 방적준비나 방적작업·제직·편직 등의 과정에서 얻은 면 웨이스트(waste)나 면제품을 가닛하여 얻은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

코움가공할 때 발생한 웨이스트(waste)[보통 코머 노일(comber noil)이라고 일컫는 것] ; 카드기계 실린더나 코움기계의 실린더에서 떼내어 회수한 면(strippings) ; 연신공정 중에서 떨어져 나온 절단된 섬유 ; 슬리버(sliver)의 조각이나 조방사(roving)의 조각 ; 카드가공할 때 발생한 비산면 ; 형클어진 실과 그 밖의 실의 웨이스트 ; 녕마를 가닛하여(garnetted)하여 얻은 실과 섬유

이 웨이스트(waste)는 지방분·먼지·그 밖의 이질물을 함유하였거나 세정·표백·염색한 경우도 있다. 이 웨이스트는 방적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a) 면 린터(cotton linter)(**제1404호**)

(b) 워딩(wadding)(**제3005호**나 **제5601호**)

(c) 면 웨이스트(waste)를 카드(card)한 것·코움(comb)한 것(**제5203호**)

(d) 섬유의 플록(textile flock)·더스트(dust)·밀네프(mill nep)(**제5601호**)

(e) 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의 녕마와 그 밖의 섬유제품의 스크랩(scrap)(**제6310호**)

52.03 -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면섬유[가넷스톡(garnetted stock)과 그 밖의 면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로서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을 분류한다(방적을 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방적준비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카드(card) 가공의 주목적은 헝클어진 면섬유를 풀어주고 다소 평행하게 병렬시키며 섬유 중에 아직 혼입(混入)되어 있는 이질물을 전부나 거의 완전하게 제거하는데에 있다. 그 다음에 이 면 섬유는 넓은 웹(web)모양[랩(lap)]으로 되며 보통 이는 다시 집속하여 슬리버(sliver)로 만들어진다. 이 슬리버는 로빙(roving)로 만들어지기 전에 코움하거나 코움하지 않은 때도 있다.

코움(comb)가공은 주로 긴 스테이플 면을 방적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잔류한 소량의 이질물을 깨끗히 제거하고 코움가공할 때 발생한 웨이스트(waste)에서 보다 짧은 섬유를 제거한다. 따라서 면의 장섬유만이 평행하게 병렬되어 남는다.

슬리버(sliver)는 코움(comb)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연신기에서 일련의 합사와 연신공정을 거친 후에 로빙으로 만들어진다. 로빙기로부터 로빙이 나올 때 직경이 제5205호나 제5206호의 단사와 유사하며 약간 꼬임(加撚 : twisted)되어 있지만 ; 그러나 꼬임(加撚)되었다 하더라도 이 로빙은 방적된 것이 아니므로 이 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슬리버(sliver)는 대개 캔에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지만 로빙은 보통 큰 보빈(bobbin)에 감아 놓는다. 랩(lap)은 보통 목재 롤러에 감는다.

이 호의 물품에는 표백이나 염색된 것도 있다.

미용사가 사용하는 슬리버(sliver) 모양의 카드(card)한 면(때로는 “barber’s wadding”이라고 부른다)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면 워딩(cotton wadding)은 제5601호에 해당되며, 의료용 워딩이나 내과용·외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워딩(wadding)은 제3005호에 해당된다.

52.04 -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204.19 -- 기타

5204.20 - 소매용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I)(B)(4)에 규정한 모양과 조건에 부합되는 면 재봉사(cotton sewing thread)를 분류한다.

다만, 이와 같은 실(thread)이 끈(twine) 등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제11부의 총설(I)(B)(2) 참조)은 **제외한다(제5607호)**.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사는 소매용인지 제11부의 총설(I)(B)(1)에 규정한 가공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205.1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205.1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205.1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205.1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205.2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205.2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205.2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205.26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5205.27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5205.28 --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205.3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205.3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5205.3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5205.3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5205.4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5205.4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5205.4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5205.4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5205.46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 5205.47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 5205.48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이 호에는 제5203호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으며 재봉사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다만, 이와 같은 실(yarn)이 끈(twine)·배의 밧줄(cordage)·로프(rope)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제5607호)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제11부의 총설(1)(B) (2)와 (3) 참조)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실은 제11부의 총설(I)(B)(1)에 규정한 가공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2.06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1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206.1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206.1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206.1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206.1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206.2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206.2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206.2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206.2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206.3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206.3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206.3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206.3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5206.4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206.4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206.4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206.4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제5205호에 대한 해설은 이 호의 실에도 준용한다.

52.07 -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207.90 - 기타

이 호에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즉, 제11부의 총설(I)(B)(3)에 규정한 모양과 조건에 해당하는 면사(재봉사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52.08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1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1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8.19 -- 그 밖의 직물의 것

- 표백한 것

5208.2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2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2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8.29 -- 그 밖의 직물의 것

- 염색한 것

5208.3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3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3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8.39 -- 그 밖의 직물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8.4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4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4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8.49 -- 그 밖의 직물

- 날염한 것

5208.5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5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59 -- 그 밖의 직물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I)(C)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으로서 200g/m² 이상인 면직물(woven fabric of cotton)을 분류한다.

면직물은 매우 다양하게 생산되며 그 특성에 따라서 의류·가정용 린넨·침대보·커튼·그 밖의 실내용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의료용 붕대·소매용 포장의 붕대(**제3005호**)
- (b) **제5801호**의 직물
- (c)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 직물(**제5802호**)
- (d) 거즈(**제5803호**)
- (e)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52.09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 -- 평직물(平織物)

5209.1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9.19 -- 그 밖의 직물

- 표백한 것

5209.21 -- 평직물(平織物)

5209.2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9.29 -- 그 밖의 직물의 것

- 염색한 것

5209.31 -- 평직물(平織物)

5209.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9.39 -- 그 밖의 직물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41 -- 평직물(平織物)

5209.42 -- 데님(denim)

5209.43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9.49 -- 그 밖의 직물

- 날염한 것

5209.51 -- 평직물(平織物)

5209.52 -- 3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9.59 -- 그 밖의 직물

제5208호의 해설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52.10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 5210.11 -- 평직물(平織物)
- 5210.19 -- 그 밖의 직물
 - 표백한 것
- 5210.21 -- 평직물(平織物)
- 5210.29 -- 기타
 - 염색한 것
- 5210.31 -- 평직물(平織物)
- 5210.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5210.39 -- 그 밖의 직물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5210.41 -- 평직물(平織物)
- 5210.49 -- 그 밖의 직물
 - 날염한 것
- 5210.51 -- 평직물(平織物)
- 5210.59 -- 그 밖의 직물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I)(C)에서 규정하는 직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제11부의 주 제2호 규정의 적용(제11부의 총설(1)(A) 참조)에 의하여 면직물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

- (a)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이고
- (b)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 (c) 200g/m² 이하인 것

비율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인조섬유의 필라멘트와 스테이플섬유의 구분 없이 전체 인조섬유의 중량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의료용 붕대·소매용 포장의 붕대(**제3005호**)
- (b) **제5801호**의 직물
- (c)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2호**)
- (d) 거즈(**제5803호**)
- (e)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52.11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 -- 평직물(平織物)

5211.1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11.19 -- 그 밖의 직물

5211.20 - 표백한 것

- 염색한 것

5211.31 -- 평직물(平織物)

5211.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11.39 -- 그 밖의 직물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 평직물(平織物)

5211.42 -- 데님(denim)

5211.43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11.49 -- 그 밖의 직물

- 날염한 것

5211.51 -- 평직물(平織物)

5211.5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11.59 -- 그 밖의 직물

제5210호의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52.12 - 그 밖의 면직물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5212.11 -- 표백하지 않은 것

5212.12 -- 표백한 것

5212.13 -- 염색한 것

5212.1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2.15 -- 날염한 것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초과인 것

5212.21 -- 표백하지 않은 것

5212.22 -- 표백한 것

5212.23 -- 염색한 것

5212.2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2.25 -- 날염한 것

이 호에는 면사(cotton yarn)로 제직한 것으로서 제11부의 총설(1)(C)에서 규정하는 직물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혼방(mixed) 직물만을 분류하나 이 류의 앞 호들이나 제11부의 후반부(보통 **제58류**나 **제59류**)에 분류하는 혼방직물은 **제외한다**는 점이다.

의료용이나 소매용의 붕대는 **제외한다(제3005호)**.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총설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제5305호의 해설에서 언급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면은 **제외한다**)로서 원료로부터 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것을 취급한다.

이 류에는 또한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과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 혼합한 방직용 섬유의 재료도 포함한다.

53.01 -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투(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5301.29 -- 기타

5301.30 - 아마의 토투(tow)와 웨이스트(waste)

아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Linum usitatissimum*이다. 아마(또는 린넨)섬유는 펙틴질(pectic substance)과 함께 결합된 인피(靱皮 : bast)의 조밀한 묶음으로 식물에 존재한다. 섬유공업에 이용하기 위한 섬유는 각각 분리하고, 식물의 나머지(특히 내부 목질 부분)와 분리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생 아마·침지(沈漬 : retted) 아마·타마·핵클(hackled) 아마·그 밖의 처리 공정(방적한 것은 제외한다)을 거친 아마를 분류한다.

(A) 생 아마(raw flax)[아마줄기(flax straw)]

이것은 수확한 아마이며 리플(rippled)하거나 볼(bolled)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즉, 잎과 종자를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B) 침지(浸漬) 아마(retted flax)

침지(retting)는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펙틴질(pectic substance)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발효법(박테리아나 곰팡이 활동에 의해서)이나 화학적 처리방법이 있다. 이 공정은 보통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1) 아마줄기를 이슬이나 습기 중에 내놓거나 ;
- (2) 아마줄기를 흐르는 시냇물·강이나 도랑·웅덩이와 같은 정지한 물속에 침지하거나 ;
- (3) 아마줄기를 온수가 들어있는 커다란 탱크에 침지하거나 ; 또는
- (4) 아마줄기를 증기로 처리하거나 화학적 처리제·미생물제로 처리한다.

침지(沈漬) 아마는 대기 중에서 건조시키거나 기계에 의하여 건조시킨다. 이 섬유는 아마경의 목질부로부터 잘 떨어지며 또한 파쇄하거나 찢게 되면 섬유는 각각 잘 분리된다.

(C) 타마(scutched flax)

아마는 처음에 목질부를 소편으로 파쇄하고 찢는다. 즉, 섬유 중의 목질 부분을 손이나 기계적으로 제거하면 아마섬유가 남게 된다. 이 공정에서 아마의 토투(tow)와 아마 웨이스트(waste)가 생긴다.

(D) 면화화 아마(cottonised flax)

생 아마를 처음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삶은 다음에 탄산나트륨으로 침투시키며 ; 그 다음에 이를 묽은 산(酸)으로 처리한다. 유리이산화 탄소에 의하여 줄기가 분해되어 섬유를 채취하게 된다. 이 처리를 한 아마는 침지(浸漬 : retted)나 타마공정은 필요하지 않는다. 면화화된 아마는 보통 표백된다.

(E) **헝클한 아마(hackled flax)[코움한 아마(combed flax)]**

헝클에 의하여 인피(靱皮 : bast)를 세로로 쪼개서 섬유를 병렬시키며 그 밖의 잔류한 잡물·짧은 섬유·파쇄된 섬유(machine tow)를 제거시킨다. 아마가 헝클기를 거치면 보통 연속된 섬유 다발의 형태로 된다. 이 섬유 다발을 연전기에 통과시키면 연속 슬리버(continuous sliver)로 만들어지며 이 슬리버는 일련의 중합과 연신공정(a series of doubling and drawing operation)을 거쳐 로빙(roving)이 만들어진다. 슬리버나 로빙으로서 정방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로빙의 최종 단계에 있어서는 두께가 거의 단사와 비슷한 정도로 가느다란 상태로 연신되며 대개 약간 꼬인다. 이러한 단사도 이 호에 분류하는데 **제5306호**에 분류하는 단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F) **아마의 토투(tow)와 아마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토투(tow)는 일반적으로 방적에 적합한 서로 다른 품질의 아마 섬유의 웨이스트(waste)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주로 타마·헝클링[코움(comb)공정]·방적같은 다양한 공정 중에 얻은 짧고 매듭되어 있으며 절단되었거나 엉킨 섬유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방적공정·권사나 제직공정 등에서 얻어지는 실의 웨이스트(waste)와, 아마로 된 웨이스트 직물조각을 찢어서 얻거나 제품(made up article)을 그 구성하는 섬유로 찢어서 얻는 웨이스트섬유도 분류한다. 이것들은 보통 재방적하여 실을 만든다.

아마의 토투(tow)와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섬유는 섬유 길이가 매우 짧아서 방적을 할 때 카드(card)는 하지만 헝클[코움(comb)]은 하지 않는다. 카드(card)공정 후에 얻어지는 슬리버(sliver)나 로빙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주로 타마나 카드 공정에서 얻은 방적에 부적합한 웨이스트(waste) 섬유도 분류하는데 이들은 심 등의 충전 재료나 모르타르(mortar)의 결합재와 제지용 원료로 사용한다.

위의 물품은 표백이나 염색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남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타마공정에서 파쇄된 아마의 목질조각(**제4401호**)

(b) 때로는 아마라 일컫는 몇몇 식물성 섬유재료[예: 인디언아마(*Abroma augusta*)(**제5303호**)와 뉴질랜드 삼·뉴질랜드 아마(*Phormium tenax*)(**제5305호**)]



[소호해설]

소호 제5301.21호

이 소호에는 토투(tow)로부터 얻은 타마(scutched flax)를 포함한다.

53.02 -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투(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5302.90 - 기타

이 호에는 대마(*Cannabis sativa L.*)만을 분류한다. 이 대마식물은 다양한 기후와 토지에서 재배된다. 대마섬유를 식물의 인피(韌皮 : bast) 부분에서 얻으며 아마의 경우(제5301호 해설 참조)와 유사한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분리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 (1) 수확된 형태의 **생 대마** : 입과 종자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침지(沈漬 : retted) 대마** : 이는 대마의 섬유가 아직 식물의 목질 부분에 부착되어 있으나 침지(沈漬)에 의하여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된 것이다.
- (3) **타(scutched) 대마** : 두드려서 식물의 목질부를 분리한 섬유이며 길이가 때로는 2m 이상인 것도 있다.
- (4) **코움(comb)한 대마**나 그 밖의 방적준비를 한 대마 섬유 : 일반적으로 슬리버(sliver)나 로빙 상태이다.
- (5) **대마의 토투(tow)와 웨이스트(waste)** : 이것은 두드리는 공정이나 코움공정 중에 얻은 웨이스트(waste)와 방적과 제직 등의 공정 중에서 얻은 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닝마와 로프나 끈의 스크랩(scrap) 등으로부터 얻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대마의 토투와 웨이스트는 실로 방적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슬리버(sliver) 모양이나 로빙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나 충전재료·제지용 재료 등에만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면화화공정(cottonisation)(때로는 아마에 응용되는 것과 유사한)을 거쳤거나 표백이나 염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그 밖의 식물성 섬유재료로서 흔히 대마라고 불리어지는 것. 예를 들면,
 - (1) 탐피코삼(istle)(제1404호나 제5305호)
 - (2) 감보(Gambo)마나 암바리(Ambari)마(*Hibiscus cannabinus*)·로젤라(Rosella)마(*Hibiscus sabdariffa*)·아부틸론(abutilon)마나 중국 황마(*Abutilon avicennae*)·인도 마·선(sunn)마·마드라스(Madras)마·캘커타(Calcutta)마·봄베이(Bombay)마나 베나레스(Benares)마(*Crotalaria juncea*)와 퀸즈랜드(Queensland)마(*Sida*)(제5303호)
 - (3) 아이티삼(*Agave foetida*)·마닐라마(abaca)·모리셔스삼(*Furcraea gigantea*)·뉴질랜드 삼·뉴질랜드 아마(*Phormium tenax*)(제5305호)
- (b) 타 대마(scutching)공정에서 제거되는 식물의 단단한 목질 부분(제4401호)
- (c) 대마의 실(제5308호)
- (d) 닝마와 로프(rope)·끈의 스크랩(scrap)(제63류)

53.03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靛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靛皮)섬유[생것이거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5303.90 - 기타

이 호에서는 아마(제5301호)·대마(제5302호)·라미(ramie)(제5305호) 이외의 쌍자엽(雙子葉 : dicotyledonous) 식물의 줄기에서 얻어진 모든 방직용 섬유를 분류한다.

여기에 분류하는 방직용 인피(靛皮 : bast) 섬유는 제5305호의 대부분의 식물성 섬유보다 촉감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섬유를 포함한다.

- (1) **본래의 의미의 황마(true jute)** : 코르코러스 캡슐라리스(*Corchorus capsularis* : 백색황마)와 코르코러스 올리토리우스(*Corchorus olitorius* : 적색황마)의 주요 두 종이 있으며, 적색황마는 토사(Tossa)라고도 부른다.
- (2) **히비스쿠스 카나비너스(Hibiscus cannabinus)** : 상거래 관습상 히비스쿠스마(Hibiscus hemp)·감보마(Gambo hemp)·사이암황마(Siam jute)·케나프(Kenaf)·빔리파탐황마(Bimlipatam jute)나 빔리황마(Bimli jute)·암바리마(Ambari hemp)·포폴라 드 상 프란시스코(Popula de Sao Francisco)·다(Dah)·메쉬타(Meshta)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 (3) **히비스쿠스 사브다리파(Hibiscus sabdariffa)** : 상거래 관습상 로젤(Roselle)이나 로젤라마(Rosella hemp)·사이암황마(Siam jute)·케나프(Kenaf)·자바황마(Java jute)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 (4) **어저귀(Abutilon avicennae)** : 아부틸론마(abutilon hemp)·중국황마(China jute)·천진(Tien-Tsin)·칭마(Ching-ma)·킹마(King-ma)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 (5) **금작화의 섬유(broom fibre)** : 스페인 금작화(Spanish broom : *Spartium junceum*)나 보통의 금작화(common broom : *Cytisus scoparius*)의 인피(靛皮 : bast)에서 얻어진다.
- (6) **슬모초(Urena lobata)와 범천화(梵天花 : Urena sinuata)** : 이들은 여러 원산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 콩고황마(Congo jute)·마다가스카르황마(Madagascar jute)나 파카(Paka)·말바 블랑카(Malva blanca)나 카딜로(Cadillo)(쿠바)·구악시마(Guaxima)·아라미나(Aramina)나 말바 록사(Malva roxa)(브라질)·카이사르(Caesarweed)(플로리다)
- (7) **네마장황(Crotalaria juncea)** : 인디언마(Indian hemp)·선마(Sunn hemp)·마드라스마(Madras hemp)·캘커타마(Calcutta hemp)·봄베이마(Bombay hemp)나 베나레스마(Benares hemp), 또는 줄부르푸르황마(Julburpur jute)라고 불려지고 있다.
- (8) **시다(sida)** : 주로 에스코빌라마(Escobilla hemp)·말바이스코마(Malvaisco hemp)·퀸즈랜드마(Queensland hemp)나 쿠바황마(Cuba jute)라고 불려지고 있다.
- (9) **테스페시아(Thespesia)** : 폴롬폰(Polompon)(베트남)이라고 불려진다.
- (10) **아브로마 아우구스타(Abroma augusta)** : 악마의 면(Devil's cotton)이나 인디언아마(Indian flax)라고 불려진다.
- (11) **클라퍼토니아 피시폴리아(Clappertonia ficifolia)** : 풍가(Punga)(콩고)나 구악시마(Guaxima)(브라질)라고 불려진다.
- (12) **트리움페타(Triumfetta)** : 풍가(Punga)(콩고)나 카라피코(Carapicho)(브라질)라고 불려진다.
- (13) **췌기풀(nettles)**

이 호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I) 섬유의 원재료[침지(沈漬 : retted)하지 않은 줄기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줄기] ; 침지(沈漬 : retted)한 섬유 ; 껍질을 벗긴 섬유(기계에 의해 얻은 것, 즉, 식물을 침지(沈漬 : retted)한 후 껍질을 벗겨서 얻은 섬유로서 때에 따라서는 길이가 2m 이상에 달한다) ; “커팅즈(cuttings)”(절단한 섬유의 근원으로 단독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원료 상태나 특정 상태의 것으로서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 재료(예: broom의 줄기)는 해당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용으로 가공[방직준비용으로서 파쇄·카드(card)·코움(comb)된 것]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II) 카드(card)나 코움(comb)하거나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를 한 섬유[보통 슬리버(sliver) 형태]
- (III) 주로 섬유를 카드(card)나 코움(comb)하는 경우에 얻어지는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 방직·제직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인피(靱皮 : bast)섬유 실의 웨이스트·넝마나 로프·배의 밧줄(cordage)의 스크랩(scrap)으로 얻은 가닛스톡(garnetted stock)·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는 실의 방적에 적합한 것인지(슬리버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충전 재료·펠트(felt)제조용·제지용의 용도에만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표백·염색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금작화의 줄기(**제1404호**)
- (b) 내과용·외과용 의료물질을 도포(塗布)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토우(tow)(**제3005호**)
- (c) 이 호의 황마사나 그 밖의 인피(靱皮)섬유사(**제5307호**)
- (d) 넝마나 로프·케이블·배의 밧줄(cordage) 등의 스크랩(scrap)(**제63류**)

[53.04]

53.05 -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투(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외떡잎 식물(예: 코코넛·아바카나 사이잘삼)의 잎이나 과실에서 얻어지거나 라미(ramie)의 경우 썩기풀(*urticaceae*)과의 쌍떡잎(雙子葉 : dicotyledonous)식물의 줄기로부터 얻어지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호에 해당하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 섬유는 대부분의 경우 제5303호의 방직용 인피(韌皮 : bast) 섬유보다 굵고 조잡하다.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않은 조잡한 것·방직용으로 제조한 것[예: 카드(card)·코움(comb)하여 슬리버(silver)로 만든 것]·토투(tow)와 섬유의 웨이스트상의 것[주로 코움(comb)가공 중에 얻은 것]·실의 웨이스트(waste)(주로 방적이거나 제직공정 중에 얻은 것)·가닛스톡(garnetted stock)[넝마·스크랩(scrap) 로프·배의 밧줄(cordage)의 스크랩(scrap) 등에서 얻어진 것]을 분류한다.

그러나 원료 상태나 그 밖의 특정모양의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 재료[특히 케이퓌(kapok)]에서 얻어지는 섬유는 해당 섬유가 방직용 섬유 재료로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것[예: 방적준비를 위한 파쇄·카딩(carding)·코우밍(combing)]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를 포함한다.

코코넛 : 코코넛 섬유[코이어(coir)]는 너트(nut)의 외표면을 구성하는 각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다갈색의 조잡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이들은 덩어리나 묶음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아바카(abaca) : 아바카(또는 마닐라마)섬유는 주로 필리핀 군도에서 재배되는 특징의 바나나 나무(*Musa textilis* Nee)잎의 줄기에서 얻는다. 이 섬유는 칼이나 기계적으로 비섬유질을 제거하여 얻으며 코움(comb)하거나 그 밖의 방적준비공정을 거친 것[예: 슬리버(silver)나 로빙 형태]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마닐라마의 섬유(Manila hemp fibre)는 기후나 바닷물에 저항력이 크므로 주로 선박용의 케이블이나 어망 제조에 사용한다. 이것은 또한 조잡한 직물 제조용이나 모자 브레이드(braid) 제조용 실(yarn)로 방적되기도 한다.

라미(ramie) : 라미(ramie) 섬유는 여러 가지의 식물[주로 보에메리아 테나시씨마(*Boehmeria tenacissima*)(레이(Rhea), 녹색 라미(green ramie))와 보에메리아 니베아(*Boehmeria nivea*)(모시풀(China grass), 백색 라미(white ramie))]의 인피(韌皮 : bast)에서 얻어지며 주로 극동 지방에서 재배된다.

지표면에서 줄기를 절단한다. 이어서 때때로 예비건조 후에 수작업이나 기계적으로 줄기의 외피질을 제거하고 내부 목질부분을 파쇄하고 제거하여 기다란 띠같은 라미(ramie) 섬유를 채취한다. 그 다음에는 섬유와 결합하고 있는 진득진득한 펙틴질을 제거하는 공정(일반적으로 알칼리액에서 끓이는 공정)으로 박피가 이루어진다.

알파(alfa)·에스파르토(esparto) : 알파 섬유나 에스파르토 섬유는 식물의 잎에서 얻는다. 그러나 이들은 롤(roll) 가공·파쇄 가공·코움 가공이나 그 밖의 섬유산업 용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가공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가공을 하지 않은 잎(untreated leaf)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4류).

알로에 섬유(aloe fibre)

아이티삼(Haiti hemp : *Agave foetida*)

헤네켄삼(Henequen : *Agave fourcroydes*)

이스틀리(istle) · 익스틀리(ixtle)[탐피코(Tampico)나 멕시코 마(Mexican hemp)] : 용설란과(*Agave funkiana*나 *Agave lechugilla*)에서 추출되며 붓 제조에 주로 사용한다. 보통 **제1404호**에 속하지만 방직용으로 가공한 경우에는 여기에 분류한다.

마게이(Maguey) · 칸탈라(Cantala) : 이들 섬유는 아가베 칸탈라(*Agave cantala*)(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아가베 테킬라나(*Agave tequilana*)(멕시코)에서 얻어진다.

모리셔스삼(Mauritius hemp : *Furcraea gigantea*) : 피테이라(piteira)(브라질)로도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삼 · 뉴질랜드아마(New Zealand hemp or flax : *Phormium tenax*)

이탄섬유[peat fibre : 베란딘 이탄(Berandine peat)나 베로딘 이탄(Beraudine peat)이라고도 부른다] : 이 섬유는 목질화된 이탄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이 섬유는 방직용으로서 가공된 상태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703호)**.

파인애플(pineapple) : 이 섬유는 꾸라나(브라질 아마조나스) · 피나(멕시코)와 실크그래스(Silkgrass)라고도 부르며, 파인애플(*Bromeliaceae*)과의 파인애플계 식물의 잎에서 얻어진다. 또한 피타 플로자(Pita floja)나 콜롬비아 피타(Colombia pita)나 아르한(Argghan) · 카로아(Carao)(브라질) · 카라테스(Karates) 등의 섬유를 포함한다.

피타(Pita : *Agave americana*)

산세비에리아(Sansevieria) : 보우스트링 마(Bowstring hemp)나 이페 마(Ife hemp)라고도 부른다.

사이잘(Sisal : *Agave sisalana*)

부들(Typha)속 : 이 섬유는 부들(Typha)속이나 부들(cattail)식물의 잎에서 얻어진다. 이들 섬유와 그 식물의 종자에 붙어 있는 짧은 헤어와 혼동하면 안되며, 구멍구 · 완구 등의 충전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호에서는 **제외한다(제1404호)**.

유카(yucca)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은 표백이나 염색을 하더라도 그 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3.06 - 아마사

5306.10 - 단사

5306.2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이 호에는 제5301호의 아마 섬유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얻은 단사와 단사를 조합하여 제조한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분류한다.

그러나 끈·배의 밧줄(cordage) 등(제5607호)의 정의에 합당한 것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 (I)(B)(2) 참조).

아마사(flax yarn)는 소매용으로 포장했거나 제11부의 총설(I)(B)(1)에 규정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결합비율에 상관없이 금속사와 결합한 아마사를 포함한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605호).

53.07 -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사

5307.10 - 단사

5307.2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이 호에는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 bast) 섬유의 슬리버(sliver)를 방적하여 얻어지는 단사나 복합사(연합사)를 분류한다.

그러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 등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제11부의 총설(I)(B)(2) 참조)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607호)**.

이러한 실은 소매용으로 포장하거나 제11부의 총설(I)(B)(1)에 규정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53.08 -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8.10 - 코이어(coir)사

5308.20 - 대마사

5308.90 - 기타

(A)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실

이 호에는 제5302호의 대마, 제5305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나 제11부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특히 케이폭(kapok)이나 이스털리(istle)와 같이 제14류에 해당하는 것]를 방직하여 만든 실[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그러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의 정의에 합당한 것은(제11부의 총설 (I)(B)(2) 참조) **제5607호**에 분류한다.

대마사는 재봉사(신발이나 가죽제품 제조용 등)용이나 직조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실은 소매용의 것이거나 제11부의 총설 (I)(B)(1)에 규정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결합비율에 상관없이 금속사와 결합한 이 호에 해당하는 실(yarn)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제5605호)**.

(B) 종이실(paper yarn)

이 호에는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에 상관없이 종이실(paper yarn)을 분류한다. 또한 소매용으로 되었거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엮은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은 제외한다.

종이실(paper yarn)은 제11부의 총설 (I)(B)(1)에 규정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단사는 습기 있는 종이의 스트립(strip)[때로는 도포(塗布)된 것]을 길이 방향으로 꼬거나 감아서 만들며 ; 복합사(연합사)는 두 가닥 이상의 단사를 합사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종이를 단순히 길이 방향으로 1회나 그 이상으로 접은 것(**제48류**)

(b) 금속사와 함께 방직된 종이실(paper yarn)이나 금속을 피복한 종이실(제조공정이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c) 금속으로 단순히 보강한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을 엮은 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제5607호**)

53.09 - 아마직물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309.19 -- 기타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의 것

5309.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309.29 -- 기타

이 호에는 아마사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 (I)(C)에 규정)을 분류한다.

이 직물은 고급 라제리나 드레스의 재료·탁상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린넨(linen) 직물은 매트리스 커버·부대(자루)·타포린(tarpaulin)·돛(sail) 등에도 사용한다.

의료용이나 소매용의 붕대는 **제외한다(제3005호)**.

53.10 -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5310.10 - 표백하지 않은 것

5310.90 - 기타

이 호에는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 bast) 섬유의 실로 제작된 직물 (제11부의 총설 (I)(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

황마직물은 부대(자루)·포장용품·리놀륨을 제조하는 바탕천·실내장식용 내장재 등으로 사용한다.

53.11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실로 제작된 직물(제11부의 총설 (I)(C)에 규정하고 있다)을 분류한다.

이들은 주로 포장용, 돛용, 타포린(tarpaulin)·부대(자루)·탁상보·매팅(matting) 제조용, 리놀륨(linoleum) 제조를 위한 바탕천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종이 스트립(paper strip)을 교차시켜 제조한 직물은 **제외한다(제4601호)**.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나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올레핀·폴리우레탄)이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나.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섬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합성섬유”와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합성섬유 : 가목에서 정의한 섬유(a) ;

재생·반(半)합성 섬유 : 나목에서 정의한 섬유(b).

제5404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인조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조”, “합성”, “재생·반(半)합성 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제5402호와 제5403호는 제55류의 합성필라멘트 토크(tow)와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크(tow)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총설

이 류의 해설을 읽을 때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제5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4류와 제55류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사용하는 “인조 섬유(man-made fibre)”란 다음과 같은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유기 중합체의 필라멘트나 스테이플 섬유를 의미한다.

- (1) 유기단량체의 중합이나 중합체를 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제39류 총설 참조)(합성섬유) ;
- (2) 천연 유기중합체를 용해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이나 천연 유기중합체를 화학적으로 변성한 것 [재생이나 반(半)합성 섬유]

(I) 합성섬유(synthetic fibre)

이들 섬유를 제조하는 기본재료는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석유 증류물이나 천연가스로부터 유도된다. 중합에 의해 생산된 물질은 적합한 용제(solvent)에 녹거나 용해되어 대기 중으로나 적절한 응고용기[용제(solvent)를 냉각하거나 증발하여 고체 형태화시키는] 중으로 방사구(분출구)를 통해 방사된다. 필라멘트의 형태로 용액으로부터 침전되는 것도 있다.

이 단계에서 이들 물질의 성질은 대개 계속되는 다음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늘림처리를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처리로 분자를 필라멘트의 길이방향으로 배열하여 결과적으로 기술적 특성(예: 강도)이 상당히 개선된다.

주요 **합성섬유**는 다음과 같다.

- (1) **아크릴(acrylic)** :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ic) 단위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 (2) **모다크릴(modacrylic)** :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ic) 단위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35% 이상 85% 미만의 것
- (3)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비환식 포화탄화수소의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는 고분자 내에 추가 치환기 없이 두 개 탄소마다 한 개씩 동일배열 위치에 메틸기 가지 그룹(methyl side group) 단위의 중량비율이 고분자 중 전 중량의 85% 이상이다.
- (4)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polyamide)** : 합성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는 고분자 내에 비환식이나 환식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아미드 결합 반복이 85% 이상이거나, 두 개의 방향족 고리에 직접 결합하고 있는 아미드 결합된 방향족 그룹이 85% 이상이다(이 때 아미드 그룹의 50%까지는 아미드 그룹으로 치환될 수 있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nylon or other polyamide)”라는 용어에는 **아라미드(aramid)**를 포함한다(제11부의 주 제12호 참조).
-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2가알코올의 에스테르와 테레프탈릭산(terephthalic acid)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 (6)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에틸렌단위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 (7)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피마자유 · 부탄-1,4-디올 · 폴리에테르 폴리올 ·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의 폴리히드록시화합물과 이소시아네이트의 중합의 결과로 생긴 섬유

그 밖의 합성섬유에는 클로로파이버(chlorofibre) · 플로우로파이버(fluorofibre) · 폴리카바미드(polycarbamide) · 트리비닐(trivinylyl)와 비닐알(vinylal)을 포함한다.

제39류의 공중합체(copolymer)나 호모폴리머(homopolymer)의 혼합체[예: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의 공중합체]가 섬유의 구성 물질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섬유를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개개구성물질의 각각의 백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폴리아미드(polyamide)를 제외하고 백분율은 중량을 말한다.

(II) 재생 · 반(半)합성 섬유

이 섬유를 제조하는 기본재료는 처리공정(용해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천연의 원료로부터 추출한 유기 중합체이다.

주요한 **재생·반(半)합성 섬유**는 다음과 같다.

(A) **셀룰로오스계 섬유(cellulosic fibre)**, 즉 :

- (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 셀룰로오스(일반적으로 아황산펄프모양)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것이다. 그 처리 결과로 생긴 알칼리-셀룰로오스는 다시 이황화탄소로 처리하여 크산테이트 셀룰로오스 나트륨으로 변화된다. 이 크산테이트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속에서 용해되어 비스코스(viscose)로 알려진 농후한 용액으로 순차적으로 변화된다.

이 비스코스는 정제·숙성된 후 방사구를 통하여 산성 응고 배스(bath)에 압출되어 재생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의 형태로 된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에는 변성 비스코스공정(modified viscose process)에 의하여 재생셀룰로오스로부터 제조한 모달섬유(modal fibre)도 포함한다.

- (2) **큐프라 암모늄 레이온[큐프로(cupro)]** : 셀룰로오스[일반적으로 린터(linter) 모양이나 화학펄프의 모양]를 큐프라 암모늄용액으로 용해시켜 얻는데 ; 이렇게 하여 얻어진 점성의 용액은 통(bath)으로 압출되고, 거기에서 침전 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가 형성된다.
- (3) **아세테이트섬유[트리아세테이트(tri-acetate)를 포함한다]** : 적어도 74% 이상의 하이드록실그룹이 아세틸화되어 있는 초산셀룰로오스에서 얻은 섬유이다. 이 섬유는 셀룰로오스[면린터(cotton linter)모양이나 화학펄프의 모양]를 무수초산, 초산과 황산의 혼합물로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최초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는 가용성의 형태로 변성되어 아세톤과 같은 휘발성의 용제(solvent)에 용해된 후 방사된다(보통 따뜻한 공기 중으로). 그리고 용제(solvent)는 증발시키고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필라멘트를 얻는다.

(B) 동물성·식물성의 **단백질계(protein) 섬유**,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이 섬유는 밀크 카세인(milk casein)을 알칼리(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에 용해시켜 숙성시킨 후 이 용액을 산성 응고 배스(bath) 중에 방출한다. 이 결과로 만든 필라멘트는 포름알데히드, 탄닌, 크로뮴염이나 그 밖의 화학적 조제품으로 처리하여 경화시킨다.
- (2) 땅콩·대두·옥수수(제인) 등의 단백질로서 (I)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그 밖의 섬유

(C) **알긴산(alginate) 섬유** : 해초류에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를 하여 점성의 용액을 얻는다(일반적으로 알긴산 나트륨) ; 이것은 특정한 금속성 알긴산염으로 변화시키는 배스에 방출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칼슘 크로뮴 알긴산염 섬유 ; 이 섬유는 불연성(不燃性)이다.
- (2) 칼슘 알긴산염 섬유 : 이 섬유는 비눗물의 약한 알칼리성 용액에서 잘 용해되며 ; 이 섬유는 일반적인 직물용 섬유로서는 적당하지 않고 특정 제조 작업에서 임시적인 실(thread)로 사용한다.

*
* *

제11부
제54류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그 필라멘트로 만든 실과 직물을 분류하며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조필라멘트 실과 섬유로 분류하는 혼합방직용 섬유의 실과 직물을 포함한다. 또한 이 류에는 제5404호나 제5405호의 모노필라멘트와 그 밖의 물품과 이들 물품으로 만든 직물도 분류한다.

이 류에는 필라멘트토우(tow)(제55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제55류의 필라멘트의 토우는 스테이플 섬유 제조에 사용하는데 반하여 이 류의 필라멘트의 토우는 일반적으로 담배필터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3306호**에 해당하는 치간 사이를 청결히 하는데 사용하는 실로서 소매용으로 개별 포장한 것[텐탈 플로스(치실)]
 - (b) **제40류**의 물품, 특히 **제4007호**의 실(thread)과 끈(cord)
 - (c) **제55류**의 물품, 특히 스테이플 섬유·스테이플섬유의 실과 직물, 인조필라멘트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와 가넷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d) **제6815호**의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
 - (e) **제7019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의 제품
-

54.01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 합성필라멘트의 것

5401.20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이 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sewing thread)로서 제11부의 총설(I)(B)(4)에 규정한 모양과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한다.

다만, 끈(twine) 등의 정의에 부합하는 실(제11부의 총설(I)(B)(2) 참조)은 **제외한다(제5607호)**.

재봉사는 소매용으로 포장되거나 제11부의 총설(I)(B)(1)에 규정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재봉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단사(single yarn)와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를 **제외한다** (경우에 따라 **제5402호·제5403호·제5404호·제5405호**).

54.02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 인지에 상관없다]

5402.11 -- 아라미드의 것

5402.19 -- 기타

5402.2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 인지에 상관없다]
- 텍스처드사

5402.3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2.32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2.33 -- 폴리에스테르의 것

5402.34 -- 폴리프로필렌의 것

5402.39 -- 기타

-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 탄성사

5402.45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6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47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8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9 -- 기타

-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402.52 -- 폴리에스테르의 것

5402.53 -- 폴리프로필렌의 것

5402.59 -- 기타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2.6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402.62 -- 폴리에스테르의 것

5402.63 -- 폴리프로필렌의 것

5402.69 -- 기타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모노필) : 67데시텍스 미만의 것
- (2) **멀티필라멘트(multifilament)**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둘부터 수백개의 필라멘트)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않은 것이나 꼬인 것이 있으며[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꼬지 않고 평행으로 감은 필라멘트로 된 단사. 제55류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필라멘트 토우(tow)도 포함한다.
 - (ii) 필라멘트를 방사구에서 방사함과 동시에 꼰 단사와 그 후 늘림공정에서 꼰 단사
 - (iii) 앞에서 설명한 단사를 결합하여 만든 복합사(연합사)와 케이블사. 이 복합사와 케이블사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로 꼬아 만든 것도 포함한다(제11부 총설(I)(B)(1) 참조).

다만, 이러한 실로서 **제5607호의 끈(twine)**이나 **제5406호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I)(B)(2)와 (3) 참조).

이 호에 해당하는 실은 방직용 실이 보통의 모양으로 된 것(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은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것은 안쪽에 지지물을 사용함이 없이 일정한 모양으로 된 것도 있다[케이크(cake) 모양 등].

위에서 이미 설명한 제외품목 이외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제5404호**의 합성모노필라멘트와 합성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b) **제5501호**의 길이 2m를 초과하는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 (c) **제5503호**의 길이 2m 이하의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 (d) **제5506호**의 톱(top)(잘게 절단된 토우)
- (e)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결합비율에 상관없이 금속사와 결합하거나 금속을 피복한 이 호에 해당하는 사를 포함한다)(**제5605호**)



[소호해설]

소호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기계적·물리적 공정[예: 꼬기(twisting)·꼬인 것 풀기(untwisting)·가짜 꼬기(假然: false-twisting)·압축·주름가공·열고정(熱固定)·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곱슬(curl)·주름(crimp)·고리(loop)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stretching force)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펴져서 곧게 되지만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텍스처드사는 높은 벌크성을 갖거나 매우 높은 신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두 가지의 높은 탄성은 텍스처드사로 하여금 특히 스트레치의류[예: 타이츠(tights)·호스·내의류]제조의 사용에 적합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이벌크사(high bulk yarn)는 직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부여한다.

텍스처드사는 꼬임이 특수하고, 루프가 작으며, 필라멘트의 평행배열이 감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텍스처드[플랫(flat)] 필라멘트사와 구별된다.

소호 제5402.46호

이 소호에는 분자가 부분적으로 배향성이 있는(oriented) 섬유로 된 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평평한 모양인 이들 실은 직접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지 않으며 먼저 뽑기(drawing) 공정이나 뽑기-가짜뽑기(draw-texturing)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 실(yarn)은 또한 “POY”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54.03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실(단사)

5403.31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3.32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3.33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403.39 -- 기타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 --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5403.42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403.49 -- 기타

이 호의 해설에 대해서는 제540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54.04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모노필라멘트

5404.11 -- 탄성사

5404.12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4.19 -- 기타

540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 :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 이하인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압출(extrusion)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lamination)이나 용해(fusion)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

(2)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시폭이 5mm 이하인 평판 모양의 스트립(strip)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이나 시트(sheet) 모양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

또한 이 호에는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즉, 접었거나 평평하게 하였거나, 압축했거나 끈 상태에 있어서)이 5mm 이하이면 이 호에 포함한다.

(i) 길이 방향으로 접은 스트립(strip)

(ii) 평판 모양의 튜브(길이 방향으로 접었는지에 상관없다)

(iii) 스트립(strip)과 앞에서 설명한 (i)과 (ii)에서 설명한 물품으로서 압축한 것이나 끈 것

폭(외견상의 폭을 포함한다)이 균일하지 않는 경우의 분류는 평균치 폭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소매용 인지에 상관없다. 이 물품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브러시·스포츠용라켓·낙식줄·외과용 봉합사·실내가구용 직물·벨트·부인용 모자·브레이드(braid)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살균한 합성모노필라멘트(**제3006호**)

(b) 합성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트립(strip)과 평판 모양의 튜브(길이 방향으로 접은 스트립과 평판 모양의 튜브를 포함한다)(**제39류**) : 압축한 것이나 끈 것 [예: 인조 스트로(straw)]인지에 상관없으나, 다만,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즉, 접었거나 평평하게 했거나 압축했거나 끈 상태에서)이 5mm를 초과하는 **경우여야 한다**.

(c) **제5402호**의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 모노필라멘트

(d) **제56류**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 (e) 합성 모노필라멘트로서 낚시 바늘을 부착했거나 낚시줄용으로 별도로 만든 것(제9507호)
- (f)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54.05 -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의 해설에 대해서는 제5404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54.06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한다)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 즉, 제11부 총설 (I)(B)(3)에 규정한 모양과 조건에 합당한 것을 분류한다.

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5407.10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 5407.2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 5407.3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5407.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5407.42 -- 염색한 것
- 5407.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5407.44 -- 날염한 것
 -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5407.5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5407.52 -- 염색한 것
- 5407.5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5407.54 -- 날염한 것
 -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5407.61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5407.69 -- 기타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5407.7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5407.72 -- 염색한 것
- 5407.7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5407.74 -- 날염한 것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5407.8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5407.82 -- 염색한 것
- 5407.8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5407.84 -- 날염한 것
 - 그 밖의 직물
- 5407.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5407.92 -- 염색한 것
- 5407.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5407.94 -- 날염한 것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작한 직물(제11부의 총설(I)(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 · 옷 안감 · 커튼재료 · 실내장식용 직물 · 텐트용 직물 · 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의료용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 (b)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합성 모노필라멘트로 제작한 직물이나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 5mm를 초과하는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작한 직물(**제4601호**)
- (c)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제5512호부터 제5515호까지**)
- (d) **제5902호**의 타이어코드직물(tyre cord fabric)
- (e) **제5911호**의 공업용의 직물

54.08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8.22 -- 염색한 것

5408.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8.24 -- 날염한 것

- 그 밖의 직물

5408.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8.32 -- 염색한 것

5408.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8.34 -- 날염한 것

이 호에는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와 제5405호의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1)(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b)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합성 모노필라멘트로 제직한 직물이나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 5mm를 초과하는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직한 직물(**제4601호**)

(c)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제5516호**)

(d) **제5902호**의 타이어코드직물(tyre cord fabric)

(e)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제 55 류

인조스테인플섬유

주:

1.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 라.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는 늘림 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늘리지 않은 것
 -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tow)는 제5503호나 제5504호로 분류한다.

총설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설명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나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tow)를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는 이 스테이플섬유나 토우(tow)로 제조하는 것으로서 실과 직물로 만들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을 분류한다. 이 밖에 이 류에는 제11부의 주 제2호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물품으로 분류하는 혼합섬유 물품도 포함한다.

인조스테인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되며; 수많은 방사구(jet)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tow)의 모양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늘림처리한 후에 짧은 길이로 절단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한다. 절단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mm 부터 180mm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실의 종류와 혼합할 방직용 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

인조필라멘트나 스테이플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 실의 웨이스트와 가넷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도 이 류에 포함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제5601호**의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길이가 5mm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 (b) **제2524호**의 석면과 **제6812호**나 **제6813호**의 석면제품과 그 밖의 제품
- (c) **제6815호**의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
- (d) **제7019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의 제품

55.01 -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1.11 -- 아라미드의 것

5501.19 -- 기타

5501.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501.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501.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501.90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한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A) 토우의 길이가 2m를 초과하여야 한다.

(B) 토우를 꼬지 않았거나 1m당 5회 미만으로 꼬아야 한다.

(C) 각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이어야 한다.

(D) 토우는 늘림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늘리지 않아야 한다.

(E) 토우의 총 측정치가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여야 한다.

위 (D)항에서의 요건은 토우가 스테이플섬유의 제조용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구로부터 방출된 직후의 합성필라멘트는 배향성(配向性 : oriented)이 불충분하므로 이들 분자의 배향성(配向性)을 높이고 섬유로서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늘림처리하여야 한다. 늘림처리한 토우는 아직 다소의 탄력성을 갖고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섬유장의 2배 미만으로 늘리면 절단된다. 반면에 늘림처리하지 않은 토우는 섬유장의 3배~4배로 늘리면 절단된다.

이 호의 토우(tow)는 일반적으로 합성스테이플 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로 된다.

(1) 스테이플 섬유로 절단하여 보통 면이나 양모에 사용하는 유사한 공정을 거쳐서 슬리버(slinger)·조방사(roving)와 실(yarn)로 제조된다.

(2) 토우-투-톱(tow-to-top) 공정(제5506호 해설 참조)을 거쳐서 톱(top)을 만든 후 실로 제조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합성필라멘트를 집속한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A)·(B)·(C)의 요건을 구비한 것 중 총 변수가 20,000 데시텍스 이하의 것이거나 늘림처리를 하지 않은 필라멘트의 것(총 변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다)(**제5402호**)

(b) 67데시텍스 이상의 합성필라멘트를 집속한 것 중 꼬지 않은 것이나 꼬은 수가 1m당 5회 미만의 것(늘림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총 변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다)(개개의 필라멘트의 횡단면이 1mm 이하의 것은 **제5404호**에, 그 밖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c) 앞에서 설명한 (B)와 (C)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길이가 2m 이하의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늘림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총 변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다)(**제5503호**)

55.02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2.1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502.90 - 기타

이 류의 주 제1호 (d)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501호의 해설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55.03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 아라미드(aramid)의 것

5503.19 -- 기타

5503.20 -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 것

5503.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503.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503.90 - 기타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합성스테이플 섬유(synthetic staple fibre)는 보통 압축하여 베일(bale)상으로 포장된다. 그 섬유는 섬유장이 일반적으로 균일한 점에서 **제5505호**에 분류하는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와 구분된다.

이 호에는 또한 길이가 2m 이하의 합성 필라멘트 토우(tow)로서 각 필라멘트의 변수가 67 데시텍스 미만의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2m를 초과하는 합성 필라멘트 토우는 **제외한다** (**제5402호나 제5501호**).

합성스테이플 섬유로서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를 한 것은 **제외한다** (**제5506호**).

**55.04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5504.90 - 기타

이 호의 물품에 대한 해설에는 제5503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55.05 -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 · 실의 웨이스트 ·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 - 합성섬유의 것

5505.20 - 재생 · 반(半)합성 섬유 의 것

이 호에는 인조섬유(man-made fibre)(필라멘트와 스테이플 섬유 - 제54류의 총설 참조)의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섬유의 웨이스트(soft waste)** : 필라멘트의 제조와 가공과정 중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진 비교적 긴 섬유 ; 스테이플 섬유의 카드 · 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과정 중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진 짧은 섬유(예: 노일 · 파쇄된 램 · 슬리버 · 조방사의 소편).
- (2) **실의 웨이스트(hard waste)** : 즉, 방적 · 합사 · 권사 · 제직 · 편직과정 등에서 파손되었거나 흘쳐매졌거나 헝클어진 실을 수집한 것
- (3) **가닛스톡(garnetted stock)** : 즉, 엉마나 엉마를 구성하는 실을 찢어서(tearing) 얻어지는 섬유

이와 같은 섬유의 웨이스트(waste)는 카드(card)나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정하여 표백되었거나 염색된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워딩(wadding)(제3005호나 제5601호)
- (b) 방적하기 위하여 카드(card) · 코움(comb) · 그 밖의 방적준비 공정을 거친 섬유의 웨이스트(waste)(제5506호나 제5507호)
- (c)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 ·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제5601호)
- (d) 신포이거나 사용한 엉마(제63류)

55.06 - 합성스테인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5506.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 5506.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 5506.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 5506.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 5506.90 - 기타

이 호에는 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공정을 거친 합성스테인플섬유 [합성스테인플섬유나 필라멘트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카드(carding) 공정 중에서는 스테인플섬유와 섬유의 웨이스트(waste)가 카드기를 통과함으로써 섬유는 대략 평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웹(web) 모양이나 랩(lap) 모양으로 된다. 그 다음에 보통 슬리버(sliver)(섬유의 가닥은 꼬이지 않은 채 느슨하게 합해져 있다)로 된다.

코움(combing)공정에서는 카드(card)된 슬리버(sliver)를 코움기에 통과시킴으로써 섬유는 거의 완전할 정도로 병렬되며 웨이스트(waste)의 경우에는 짧은 섬유[노일(noil)]가 제거된다. 코움(comb)된 슬리버(sliver)는 보통 코일(coil)이나 공(ball) 모양으로 감겨지며 이른바 “톱(top)”으로 알려져 있다.

톱은 토우-투-톱(tow-to-top)으로 알려진 공정에 의하여 필라멘트 토우(tow)로부터 직접 만들기도 한다.

토우(tow)는 섬유의 연속성이나 병렬된 배열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필라멘트를 절단하거나 끊는 장치를 거치게 된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회전속도가 다른 롤러 사이에 토우(tow)를 통과시켜 필라멘트를 끊을 수 있는 장력을 일으키게 하여 필라멘트를 끊거나 ; 잇날(齒 : toothed)이 붙은 롤러로 직접 압력을 가하여 필라멘트를 끊거나 ; 또는 토우를 절단 칼이 붙어 있는 기계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이와 같은 기계를 거치는 동안 토우는 늘림처리하여 슬리버(sliver)로 된다. 이 공정으로 토우를 스테인플섬유로 절단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card)공정을 생략하거나 보통 카드(card)공정 · 코움(comb)공정 모두를 생략하게 된다.

카드(card) · 코움(comb)이나 토우-투-톱(tow-to-top) 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슬리버(sliver)는 늘림처리하여 조방사(roving : 병렬된 섬유의 가느다란 속으로서 약간 꼬인 것)를 생산하는데, 이 조방사로 일단계의 방적공정에 의하여 실을 만든다.

이 호에는 워딩(wadding)을 **제외한다(제3005호나 제5601호)**.

**55.07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에 대한 해설은 제5506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55.08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5508.2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I)(B)(4)에서 설명된 모양과 조건에 해당하는 재봉사(sewing thread)를 분류한다.

다만, 끈(twine) 등에 관한 정의(제11부의 총설(I)(B)(1) 참조)에 부합하는 재봉사는 **제외한다(제5607호)**.

재봉사는 소매용으로 포장하거나 제11부의 총설(I)(B)(1)에서 규정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55.09 - 합성스테인폴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 -- 단사

5509.1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 -- 단사

5509.2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 -- 단사

5509.3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그 밖의 실(합성스테인폴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 단사

5509.4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polyester)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 --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509.52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509.53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509.59 -- 기타

-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509.62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509.69 -- 기타

- 그 밖의 실

5509.91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509.92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509.99 -- 기타

제11부
55.09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인플 섬유의 조방사(roving)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실[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는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다만, 합성스테인플 섬유사가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제5511호**)나, 끈(twine)·배의 밧줄(cordage) 등의 정의에 맞는 경우(**제5607호**)에는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I)(B)(2)와 (3) 참조].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I)(B)(1)에서 설명된 공정을 거친 실을 포함한다.

55.1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 -- 단사

5510.1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510.20 -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510.30 -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510.90 - 그 밖의 실

이 호의 물품에 대한 해설은 제5509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55.11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1.2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1.3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이 호에는 인조스테이플 섬유사(man-made staple fibre)(재봉사는 **제외한다**)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즉, 제11부의 총설 (I)(B)(3)에 설명된 모양과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한다.

55.12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2.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2.19 -- 기타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2.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2.29 -- 기타

- 기타

5512.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2.99 -- 기타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직물(woven fabric)(제11부의 총설(I)(C)에 규정함)을 분류한다.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용 재료, 커튼이나 그 밖의 실내가구용 직물, 탁상보·모포·타월용 등의 재료를 포함한다.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는 **제외한다(제3005호)**.

55.13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인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인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513.1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513.1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3.19 -- 그 밖의 직물

- 염색한 것

5513.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513.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3.29 -- 그 밖의 직물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3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513.39 -- 그 밖의 직물

- 날염한 것

5513.4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513.49 -- 그 밖의 직물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 (I)(C)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직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제11부의 주 제2호의 적용에 의하여 합성스테인플 섬유직물로 분류하는 것(제11부의 총설(I)(A)도 참조)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들 직물을 포함한다.

(a)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의 전 중량의 85% 미만으로서,

(b) 주로 면과 혼방하고,

(c) 170g/m² 이하의 것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는 **제외한다(제3005호)**.

55.14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인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인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514.1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514.19 -- 그 밖의 직물

- 염색한 것

5514.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514.2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514.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4.29 -- 그 밖의 직물

5514.3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날염한 것

5514.4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514.4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514.4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4.49 -- 그 밖의 직물

이 호의 물품에 관한 해설은 제5513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55.15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515.12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515.13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515.19 -- 기타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515.22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515.29 -- 기타

- 그 밖의 직물

5515.9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515.99 -- 기타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작한 직물(woven fabric)(제11부의 총설(I)(C)에서 정의한)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부분에 속하는 호의 혼방직물(mixed woven fabric)이나 이 부의 뒷부분(주로 제58류나 제59류)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혼방직물을 **제외하고** 제11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혼방 직물만을 분류한다.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bandage)는 **제외한다(제3005호)**.

55.16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6.12 -- 염색한 것

5516.1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6.14 -- 날염한 것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6.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6.22 -- 염색한 것

5516.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6.24 -- 날염한 것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6.32 -- 염색한 것

5516.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6.34 -- 날염한 것

-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6.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6.42 -- 염색한 것

5516.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6.44 -- 날염한 것

- 기타

5516.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6.92 -- 염색한 것

5516.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6.94 -- 날염한 것

제11부
55.16

이 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woven fabric)(제11부의 총설(I)(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용 재료, 커튼이나 그 밖의 실내 가구용 직물, 테이블보·모포·타월용 등의 재료를 포함한다.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는 **제외한다(제3005호)**.

제 56 류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주: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이나 조제품(예: 제33류의 향수나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 · 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 유연제)을 침투 · 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 제5811호의 섬유제품
 - 천연 ·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05호)
 -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14호)
 - 금속박(箔)을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 · 탐폰, 냅킨(기저귀) · 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펠트(felt)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방직용 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직물류[웹(web) 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해당 직물의 응결력을 높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컴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 제560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제39류나 제40류)
 -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
 -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으로서 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나 제40류)
- 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 ·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통상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은 포함하지 않는다(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총설

이 류에는 많은 종류의 특수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예를 들면,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nonwoven) · 특수사(special yarn) · 배의 밧줄(cordage)과 이들 재료의 특정 제품을 분류한다.

56.01 -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 면으로 만든 것

5601.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1.29 -- 기타

5601.3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A)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wadding)**은 카드(card)하거나 에어레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워딩(wadding)은 때때로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물품으로 받쳐서 워딩층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볍게 두들긴다.

워딩(wadding)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sheet) 모양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이나 그 밖의 면(棉)의 워딩(wadding)]이나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한다. 카드(card)하거나 가닛(garnet)한 웨이스트(waste)로 만든 낮은 등급의 워딩에는 보통 상당량의 넵(nep)이나 실의 웨이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워딩은 표백이나 염색·날염된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표면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량의 응집제(agglutinating substance)를 살포시킨 워딩도 포함한다. 부직포에 비하여 이러한 워딩의 내부층의 섬유는 쉽게 분리된다.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볍게 두들겨서 내부나 외부의 직물의 지지물에 고정시킨 워딩이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에 종이·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봉합이나 접착에 의하여)로 덮은 워딩도 워딩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5811호**의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워딩은 주로 속 채움용(예: 어깨의 속받침·의류의 안감·보석상자용 패드 등, 가구재와 세탁물 압축기), 포장 재료나 위생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원단상으로 되어 있거나 용도에 따라 일정 길이로 절단되어 있는 워딩과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워딩제품을 분류한다(아래의 제외 규정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워딩제품은 다음과 같다.

- (1) 창·문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데 사용하는 롤 모양의 워딩으로서, 실을 가지고 나선형으로 감은 것, 그러나 방직용 섬유는 직물류로 완전히 피복한 것은 **제외한다(제6307호)**.
- (2) 장식용의 워딩제품(**제95류**의 제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 워딩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의약품용 침투·도포(塗布)시켰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소매용으로 일정한 형태로 하거나 포장한 워딩이나 워딩제품(**제3005호**)
 - (b) 물질이나 조제품[예: 향료나 화장품류(**제33류**), 비누나 세척제(**제3401호**), 광택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3405호**), 직물유연제(**제3809호**)]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한 워딩(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이들 물질이나 조제품의 지지 매개체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c)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그 제품(일반적으로 **제48류**)
 - (d) 슬리머(sliver) 모양의 카드(card)한 면으로서 미용사가 사용하는 것(예: 미용사 “워딩”)(**제5203호**)
 - (e)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박음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워딩과 조합한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을 **제외한다**)(**제5811호**)
 - (f) 의복용 패드(**제6117호**나 **제6217호**).
 - (g) 조화(造花)용의 꽃·줄기·과실과 이의 부분품(**제6702호**)
 - (h) 연극용 가발·가수염과 그 밖의 **제6704호**의 물품
 - (ij) **제95류**의 축제용·카니발용 제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 물품과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과 그 밖의 물품(예: 인형의 가발)
 - (k) **제9619호**의 위생 타월[패드(pad)]·탐폰(tampon), 유아용 냅킨(기저귀)·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B)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mm 이하의 것(플록)과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

“방직용 섬유의 플록(textile flock)”은 길이가 5mm 이하인 방직용 섬유(견·양모·면·인조섬유 등)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전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waste)로 얻어지며 특히 벨벳의 전모공정 중에서 얻어진다. 또한 섬유의 토크(tow)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는 섬유의 웨이스트로 얻어지거나 방직용 섬유를 갈아서 만든다.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는 표백·염색하거나 섬유를 인공적으로 곱슬꺾(curl) 가공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물품들은 대단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예: 다른 섬유와 섞어서 실로 방직하거나 벽지 도포(塗布)용이나 벽지 장식용의 모조 스웨이드(imitation suède) 제조용, 얼굴 화장분(face powder)이나 “메이크업(make-up)”의 기본 재료용].

다만, 향료를 첨가한 방직용 플록(flock)과 더스트(dust)는 **제외한다(제3307호)**.

이 호의 플록(flock)은 엉마로부터 만든 플록으로서 침대·쿠션 등의 충전물로 사용하는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플록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웨이스트(waste)”로 분류한다.

(C) 밀네프(mill nep)

이들은 견·양모·면·인조스테이플섬유 등으로 만든 균일한 크기의 작은 볼(ball)(때로는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섬유를 두 원판 사이에서 롤링시켜 만든다. 이 밀네프(mill nep)는 표백하거나 염색하여 모조 홈스펀사(imitating homespun)와 같은 장식사(fancy yarn)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56.02 -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602.1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5602.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5602.2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5602.90 - 기타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이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을 겹쳐서 만들며;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 또한 이는 직조된 펠트직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된다(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펠트는 일반적으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제조되거나 이들 섬유와 그 밖의 천연섬유(예: 식물성 섬유·말의 털)나 인조섬유와의 혼합물로 제조된다.

펠트는 의복류·모자·신발·신발바닥·피아노해머·가구·장식용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단열재나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포함한다.

-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로 가공한 것; 또는
- (2) 방직용 섬유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로 된 바탕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섬유를 놓고(나중에는 바탕천이 해당 섬유에 의하여 다소 덮혀진다) 바느질 한 것

니들룸공법은 펠트화하지 않은 식물성섬유(예: 황마)나 인조섬유에서 펠트(felt)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느질이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접착에 보조수단인 스테이플섬유의 바느질가공 웹(web)과 필라멘트를 바탕으로 하여 바느질 가공한 웹(web)은 부직포(nonwoven)로 간주한다(**제5603호**).

이 호에는 **스티치본드(stitch-bonded)직물류**를 포함하는데 그 직물의 본질적인 특징은 해당 물품이 방직용 섬유를 응집한 웹(web)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그 응집력이 방직용 섬유의 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웹자체의 섬유를 걸어올림으로써 향상되게 되어 있다. 섬유는 바늘로써 웹을 통하여 끌어 당겨지며 표면에 체인스티치(chain stitch)의 열을 형성한다. 이들 직물 중 어떤 것은 파일상의 표면(파일을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직용 섬유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의 바탕으로 보강한 것도 있다. 스티치본딩 메리야스 편물공법은 제60류 총설에 기술하고 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그 밖의 가공 없이(예: duster, blanket)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펠트(felt)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하거나 포장에(예: 소매용) 넣어진 것인 지에 상관없다].

펠트(felt)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보강[예: 방직용 섬유실(thread)이나 철선]한 것도 있다.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판지·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

다만, **제39류**나 **제40류**에 해당하는 다음 물품은 **제외한다**.

- (a)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이거나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 (b) 펠트(felt)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것(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plastic and textile combinations)**” 이라 칭하는 부분과 제4008호의 해설 (A) 참조)

이 호에는 정상적인 펠트공정을 거친 후 타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침투시켜 제조된 **루핑펠트(roofing felt)**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33류**의 향료나 화장품류·**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제3405호**류의 광택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3809호**의 직물유연제 등의 물질이나 제조품을 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한 펠트(felt)(방직용 섬유가 이들 물질이나 조제품의 단순한 매체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b) 안장용 깔개담요와 패드(pad)(**제4201호**)
- (c) **제57류**의 양탄자류와 펠트제의 그 밖의 바닥깔개
- (d) **제5802호**의 터프트한 펠트(felt)
- (e) 자수한 펠트(felt)로서 원단 모양·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 모양의 것(**제5810호**)
- (f)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박음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 재료와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에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을 **제외한다**)(**제5811호**)
- (g) 펠트(felt)의 뒷면에 도포(塗布 : coated)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5904호**)
- (h) 침포(針布 : card clothing)로 사용하는 고무·가죽·그 밖의 재료로 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한 펠트(felt)와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제5911호**)
- (ij)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연마재료로 피복한 펠트(felt)(**제6805호**) 응결운모나 재생운모로 도포(塗布)한 펠트(**제6814호**)
- (k) 여러 개의 방직용 섬유 층에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완전하게 피복하여 만든 건축용 판(**제6807호**)
- (l) 펠트(felt)의 뒷면에 부착한 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56.03 - 부직포(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1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603.1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5603.1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 기타

5603.9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9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603.9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5603.9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 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다음의 3단계[웹(web)형성, 접착과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

I. 웹형성(web formation)

웹(web)을 만드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 (a) 섬유를 카딩(carding)하거나 에어레이잉(air-laying)함으로써 시트(sheet)를 형성하여 만드는 방법. 이들 섬유는 평행 · 교차이나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다(dry-laid공정) ;
- (b) 방출된 필라멘트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 · 냉각시켜서 직접 웹(web)으로 만들거나 응고 · 세척하여 직접 습식의 웹(web)으로 만드는 방법(spun laid공정) ;
- (c) 섬유를 물속에서 서스펜딩(suspending) · 분산시켜 이러한 결과로 생긴 슬러리(slurry)를 와이어스크린에 침전시킨 다음 물을 제거하여 웹(web)을 만드는 방법(wet-laid공정) ;
- (d) 섬유의 제조 · 웹(web)의 형성과 접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수기술에 의한 방법(in situ공정)

II. 접착(bonding)

웹(web)형성 후 섬유를 웹의 층과 폭에 걸쳐서 결합하거나(연속법) 점이나 파편으로 결합한다(간헐법).

이러한 접착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다.

- (a) 화학적 접착(chemical bonding) : 섬유를 접착물질로 결합시킨다. 이와 같은 접착은 용액(solution)이나 에멀전(emulsion)으로 되어 있는 고무·검·전분·아교·플라스틱 등의 접착성 있는 결합제(adhesive binder)를 침투시키거나 가루 상태의 플라스틱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용제(solvent)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바인딩 화이버(binding fibre)도 화학적 접착에 사용될 수도 있다.
- (b) 열접착(thermal bonding) : 섬유를 열(또는 초음파)처리로 결합시킨 후 웹(web)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나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
- (c) 기계적 접착(mechanical bonding) : 물리적으로 구성섬유를 얽히게 함으로써 웹(web)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접착은 고압공기나 물 분사기로 이루어진다. 또한 바늘의 사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스티치본딩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바늘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이 부직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
 - 필라멘트를 기본재료로 한 웹(web) ;
 - 바느질이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접착을 보완하고 있는 스테이플섬유웹(staple fibre web)이러한 여러 가지의 접착공정은 때로는 조합하여 시행되기도 한다.

III. 완성가공(finishing)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를 타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서 응집하여 제조된 특정의 “루핑 펠트(roofing felt)”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되나 다만, 소량의 코르크(cork) 과편을 결합한 소위 “역청펠트(bitumen felt)”로 알려진 특정물품도 포함한다.

다만, 제39류나 제40류에 해당하는 다음 물품은 제외한다.

- (a)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안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塗布)나 피복한 사실을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것
- (b)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용으로 사용된 것(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plastic and textile combination)**”이라 칭하는 부분과 제4008호의 해설(A) 참조)

*
* *

부직포는 제조공정이나 접착공정과 섬유와 필라멘트의 밀도·웹(web)의 수량에 따라 두께와 특성(유연성·탄력성·내과열성·흡습성·안정성 등)이 달라진다. 어떤 종류의 부직포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새미가죽·제5601호의 워딩(wadding)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은 제조공정 중에 섬유가 소화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구별된다.

결국, 웹(web)과 시트(sheet)의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섬유나 필라멘트가 접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직포를 제5601호의 특정 종류의 워딩으로부터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제5601호 해설 참조).

어떤 부직포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물류와 같이 세탁도 가능하며 비틀어 짤 수도 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overlay) ; 일회용의 냅킨(diaper)이나 위생용 타월 제조용 탑 시트(top-sheet) ; 보호용 의류나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 액체나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이나 그 밖의 토목공사에서의 여과나 분리용으로 사용하는 시트(sheet) ; 역청루핑직물(bituminous roofing fabric)의 제조용 바탕 ; 터프트한 양탄자류 등에 대한 이면재(주·부재료) ; 손수건·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의료용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 (b) 제33류의 향료나 화장품류,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크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 등의 물질이나 조제품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한 부직포(방직용 섬유 재료가 단순히 매체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c)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제5602호)
- (d) 제57류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부직포로 된 바닥깔개
- (e) 제5802호의 터프트(tufted)한 부직포
- (f) 볼덕(bolduc)(제5806호)
- (g) 원단상의 자수한 부직포[스트립(strip)과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제5810호)
- (h)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섬유제품(박음질과 그 밖의 방법으로 부직포제의 충전제와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의 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 천을 **제외한다**)(제5811호)
- (ij) 제5911호의 공업용의 부직포
- (k)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으로 연마재료를 피복한 부직포(제6805호)·응결운모나 재생운모로 피복한 부직포(제6814호)
- (l)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금속박(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56.04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4.90 - 기타

(A)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로 피복[예: 짐프하였거나(gimped) 엮은 것]된 것인 한 이 그룹에는 한 가닥의 고무실(thread of rubber)(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다)과 이들 고무실로 만든 여러 가닥으로 된 고무끈(cord)을 포함한다.

(B) 방직용 섬유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사와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는데 침투·도포(塗布)·피복된 실인 경우에는 그 침투·도포(塗布)·피복된 사실을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침투한 방직용 실(impregnated textile yarn)에는 고무에 대한 점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표면처리한 후 타이어·기계용의 벨트(belt)나 벨팅(belting)과 튜브 등의 제조과정 중 결합되는 방직용 실로 된 침염한 실(dipped yarn)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 중에는 플라스틱을 두껍게 드레싱 가공한 방직용 섬유사로 된 모조 캣거트(imitation catgut)도 있는데, 서로 다른 특성에 따라 스포츠용 라켓·낚시줄·벨트·브레이드(braid)·가구용 직물·외과용 봉합재 등의 제조와 방직용 섬유사를 플라스틱 시드(sheath)에 결합시켜서 만드는 빨랫줄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고무로 응결한 방직용 실을 병렬시켜 만든 직물(제5906호)

(b) 낚시 바늘을 부착했거나 낚시줄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모조 캣거트(제9507호)

56.05 -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방직용 섬유사[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과 종이실(paper yarn)를 포함한다]에 금속의 실이나 스트립(strip)을 결합시킨 실** : 이 실은 금속의 비율에 제한없이 꼬임·합연·짐핑(gimping)함으로써 만드는 것이다. 짐프사(gimped yarn)는 금속의 실이나 스트립(strip)을 가지고 방직용 섬유심위에 나선형으로 감아서 만드는 것이며 금속의 실이나 스트립(strip)과 합연(合燃)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있어서 귀금속이나 도금된 금속이 자주 사용한다.
- (2) **방직용 섬유사[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과 종이실(paper yarn)를 포함한다]에 별도의 가공을 거쳐 금속을 피복한 실** : 이 호의 범주에는 전기침전법(electro-deposition)으로 금속을 피복시킨 실이나 접착제(예: 젤라틴)를 도포(塗布)한 실에 금속분(예: 알루미늄이나 청동)을 뿌려서 피복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 알루미늄박)의 심(core)으로 된 물품이나 금속 가루로 도포(塗布)한 플라스틱 필름의 심을 두 개 층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삽입 접착하여 만든 물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겹의 실로 구성된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예: 위에서 설명한 두 가닥 이상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 연합하여 만든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장식용의 끈(cord)]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여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특정 형태의 실. 즉, 두 가닥 이상의 평행한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 금속사나 스트립(strip)으로서 결속시킨 것을 포함하며 이 호의 실로서 짐프한(gimped) 실이나 실다발도 포함한다.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는 짐프한(gimped) 것도 있으며 트리밍(trimmings)·레이스의 제조와 장식용 끈(cord) 등과 같은 특정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방직용 섬유와 금속섬유의 혼합사로서 정전기 방지의 효과를 부여한 것(경우에 따라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 (b) 금속사(metal thread)로 보강한 실(**제5607호**)
- (c) 장식적인 트리밍(trimmings)의 특성을 가진 끈(cord)·걸륜(galloon)·그 밖의 물품(**제5808호**)
- (d) 금·은·구리·알루미늄이나 그 밖의 금속의 선(wire)이나 스트립(strip)(**제14부**과 **제15부**)

56.06 -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A)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의 유사한 것 [짐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core)의 주위에 한 가닥이나 그 이상의 실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실은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겨진 나선형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도 있으며 ; 뒤의 경우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의 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나 장식사와 같은 외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심자체가 피복사(cover thread)와 함께 꼬여있지 않은 짐프사(gimped yarn)의 특성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다.

이 호의 짐프사(gimped yarn)의 심(core)은 보통 면·그 밖의 식물성 섬유나 인조섬유를 사용하고 피복용사는 보통 섬세하고 광택 있는 섬유(예: 견·머서 가공된 면이나 인조섬유)를 사용한다.

그 밖의 재료로 된 심을 가지고 있는 짐프사는 방직용 섬유물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서 반드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짐프사(gimped yarn)는 그 자체로 직접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트리밍의 제조에 사용한다. 그러나 어떤 것은 다른 용도, 예를 들면, 단추 구멍 끈(cord)·자수용·소하물 포장용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제5110호**)
- (b) 섬유로 짐프한 고무실(**제5604호**)
- (c) 짐프한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 (d) **제5808호**의 밀라네이즈(milanaise)와 이와 유사한 끈(cord)과 그 밖의 짐프한(gimped) 방직용 물품
- (e) 짐프한 금속선(metal wire). 예를 들면 :
 - (i) 모자의 구조틀 제조용 철강선과 조화(造花)나 헤어 컬러(hair curler)용 철강선의 줄기(**제7217호**)
 - (ii) 절연전선(**제8544호**)

**(B) 셔닐사(chenille yarn)
[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셔닐사(chenille yarn)는 일반적으로 두 가닥 이상의 방직사를 함께 꼬아서 방직사의 짧은 끝을 붙잡아 매게 되어 방직사의 짧은 끝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 그 방직사는 메리야스용 직조기에서 형성된 루프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셔닐사는 실 길이의 전체에 파일로 된 술(tuft)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셔닐사는 보통 특수한 연사기[예: 링 트위스터(ring twister)나 라셀 편기(Raschel knitting machine)]로 직접 제조하거나 특수한 레노 직물을 절단하여 만들며 ; 뒤의 공정은 레노 직물의 각 경사군의 양편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경사(經絲)[지경사(地經絲 : ground thread)와 교차경사(crossing thread)]는 셔닐(chenille)사를 지지하는데 쓰이고 위사(緯絲)는 파일상이 된다.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사를 심(core)으로 하고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을 고착시켜 만든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플록 셔닐사의 제조공정은 심사(core yarn)를 접착제 용액조에 통과시킨 후 고압 정전기 하에서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을 방사상으로 심에 고착시키는 장치를 통과시켜 만든다.

특히 셔닐사(chenille yarn)는 셔닐 직물(제5801호)·복식품·침구·카펫·트리밍(trimmings)·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C)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루프웨일사(loop wale-yarn)는 원편기로 만든 관(管) 모양의 실이며, 눌러서 평판상으로 만들었을때의 폭이 1.5mm부터 2mm까지이다. 루프웨일사는 프린지 fringe)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부속품, 그리고 재래식 경직기·위직기로 제직하는 직물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56.07 -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사이잘(sisal)이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 -- 포장용 끈

5607.29 -- 기타

-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 -- 포장용 끈

5607.49 -- 기타

5607.50 -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5607.90 - 기타

이 호에는 꼬거나 엮어서 만든 끈(twine)·배의 밧줄(cordage)·로프(rope)·케이블(cable)을 분류한다.

(1)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지 않거나 짜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가 이 호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는 제11부의 총설(I)(B)(1)과 (2)(특히 표)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금속사(metal thread)로 보강된 방직용 섬유사(textile yarn)는 항상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 사용한 메탈스트랜드(metal strand)는 대체로 굵고 장식적인 목적이 없이 단지 보강재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와는 상이하다.

또한 이 그룹에는 비교적 완전하게 쪼개서 꼬임에 의하여 필라멘트로 만든 가는 섬유가 있는 스트립(strip)으로 제조한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을 포함한다.

(2)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에 한정한다]

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管) 모양의 브레이드(braid)이며 이는 제5808호의 브레이드보다 조잡한 재료로 만든다. 그러나 이 호에서 엮은 물품은 사용한 실의 특성이 보다 적고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밀한 구조로 짠 엮어진 점에서 제5808호의 물품과 다르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착색되어 있지 않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섬유는 대마·황마·사이잘(sisal)마·면·코이어섬유와 합성섬유이다.

종이실(paper yarn)로 만든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은 단순히 엮었거나 금속으로 보강된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은 포장·예인(towing)·적하(loading) 등에 있어서 묶는 끈으로 사용한다. 이것들의 횡단면은 보통 원형이나 어떤 것(예: 전동용 케이블)은 사각형·사다리형·삼각형도 있다. 이들은 보통 표백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염색한 것·방부제를 침투시킨 것·색상이 다른 스트랜드로 만든 것·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塗布)·피복·시드한(sheathed) 것도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과자점이나 꽃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제5605호의 장식용 끈(cord)
- (b) 제5606호의 짐프사(gimped yarn)·셔닐사(chenille yarn)·루프웨일사(loop wale-yarn)
- (c) 제5609호의 물품
- (d) 제5808호의 밀라네이즈(milanaise)와 이와 유사한 끈(cord)과 그 밖의 짐프한(gimped) 방직용 섬유제품
- (e) 포장이나 운할재로서 공업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끈(cord)·브레이드(braid)·이와 유사한 것(금속을 도포(塗布)·침투·보강시켰는지에 상관없다)(제5911호)
- (f) 제6310호에 해당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 (g) 연마재를 도포(塗布)한 끈(twine)·코드(cord) 등(제6805호)
- (h) 운동용품(제9506호)



[소호해설]

소호 제5607.21호

이 소호는 사이잘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된, 꼬임이 “Z”행인 단일의 끈으로서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한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한다.

$$R = \frac{17,400}{n} - 18$$

(R은 끈의 절단력을 데카뉴턴(daN)으로 표시한 것이며 n는 1kg 당 끈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No.150(150m/kg)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98daN이고 No.200(200m/kg)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69daN이며 No.300(300m/kg)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40daN이다.

소호 제5607.41호

이 소호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꼬임이 “Z”행의 단일의 끈으로서 태양열에 의한 품질저하에도 안정적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

- (a)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

$$R = \frac{32,400}{n}$$

(R은 끈의 절단력을 데카뉴턴(daN)으로 표시한 것이며, n는 1kg당 끈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고 있다) ;

- (b)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knot평균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 :

$$R' = 0.58R$$

(R'는 평균 knot 절단력을 daN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절단력의 최소치가 98daN이고 평균 knot 절단력이 57daN인 것은 끈 330수(330m/kg)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56.08 -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 -- 제품으로 된 어망

5608.19 -- 기타

5608.90 - 기타

(1)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매듭이 있는 그물감

이 물품들은 단순히 길다란 망지(length of netting), 즉, 손으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든 그물코가 있는 매듭이 있는 직물이다. 이들은 제5607호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제5804호의 망직물과 다르다.

(2)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앞에서 설명한 (1)의 물품과는 달리 이들 그룹의 제품들은 실로 만들어지며 그물코는 매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다.

제품으로 된 망은 망(made up net)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망 조각들을 합쳐서 만든 것이며 끈 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손잡이·고리·추·부표·끈(cord)·그 밖의 부착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제품으로 된 이 호의 망은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망류에 **한정하며** 여기에는 어망·위장망·극장의 배경용 망·안전망·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 망(예: 테니스볼용이나 축구볼용)·그물 침대용 망·기구용망·비행선용 망·방충망 등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다른 물질로 침투시켰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예: 기후나 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단상태의 망지(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

(b) 헤어 네트(hair net)(제6505호)

(c) 제95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망(예: 골 네트와 테니스네트)·물고기를 건져내는 뜰채용 망과 그 밖의 망

56.09 - 실 ·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 ·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이나 양끝에 고리(loop)를 만들거나 태그 · 고리 · 갈고리 등을 부착한 실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예: 구두끈 · 의복용 끈 · 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 · 하역용 쿠션 · 로프 사다리 · 적하용 밧줄 · 실다발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굴레(bridle) · 고삐(rein, halter) · 마구류(馬具類)등(**제4201호**)
 - (b) 자카드기(Jacquard)나 그 밖의 기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일정 길이로 절단된 끈(cord)[결절이나 고리를 만들었거나 금속이나 유리 아이릿(eyelet) 등을 부착시킨 것](**제5911호**)
 - (c) 방직용 섬유 직물과 그 제품으로서 각기 적절한 호에 분류하는 것[예: 브레이드(braid)로 만든 구두끈은 **제6307호**에 분류한다]
 - (d) 샌들용의 로프제 신바닥(**제6406호**)
 - (e) **제95류**의 운동용품과 그 밖의 물품
-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

주: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 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 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바닥 깔개의 밑받침은 제외한다.

총설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를 분류하며 바닥 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바닥에 까는 물품의 밑받침, 즉, 바닥과 양탄자 중간에 놓는 거친 직물이나 펠트 패딩(felt padding)(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리놀륨(linoleum)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塗布: coated)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그 밖의 바닥에 까는 물품(**제5904호**)

57.01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매듭이 있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매듭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는 팽팽한 경사 둘레에 파일사가 매듭이 있거나 적어도 한 개의 경사(經絲 : thread)둘레에 완전한 회전을 이루면서 감겨짐으로써 만들어진다. 이 파일사는 조밀하게 직조한 위사(緯絲)를 삼입함으로써 파일사의 자리가 유지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매듭이 있거나 끈 것이 이 호의 물품의 특성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매듭은 다음과 같다.

- (1) **기오드(Ghiordes)식이나 터키(Turkish)식 매듭** : 파일사는 두 가닥의 인접된 경사(經絲)의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파일사의 양 끝은 두 가닥의 경사(經絲)의 둘레에 완전하게 회전 시키기 위하여 두 가닥의 경사(經絲) 사이에서 뒤로 빼낸다(그림 1 참조). 파일사의 양끝이 직립하여 양탄자의 표면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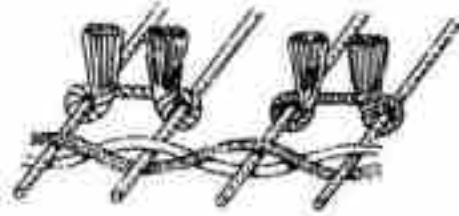


그림 1

- (2) **센나(Senna)식이나 페르시아(Persian)식 매듭** : 파일사가 한 가닥의 경사(經絲)의 둘레에 감겨진 다음 다른 한 가닥의 경사(經絲)의 밑을 지나게 되며(그림 2 참조) 그 다음 파일사의 양끝이 직립하여 양탄자의 표면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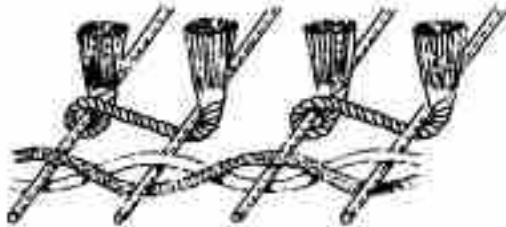


그림 2

또한 기오드 매듭과 센나식 매듭에 있어서 파일사는 네 가닥의 위사(緯絲)를 포함하는 때도 있다.

- (3) **단일 경사(經絲 : single warp) 매듭** : 각 파일사가 한 가닥의 경사(經絲)의 둘레에 감긴다거나 매듭하여 만들며 ; 각 파일사가 경사(經絲)의 둘레에 한 바퀴 반(1.5회전)만큼 감기어서 (그림 3 참조) 이의 양끝이 직립하여 양탄자의 표면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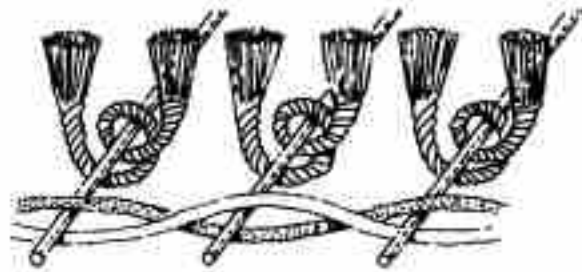


그림 3

인접되어 있지만 각각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는 일련의 매듭이 바탕천의 전폭에 걸쳐 덮고 있음으로써 양탄자를 이루고 있다.

이 호에는 또한 헐겁게 짜여진 바탕천에 과일사로 매듭하여 만든 특정의 양탄자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매듭한 양탄자(carpet)·양탄자지(carpeting)와 러그(rug)는 용도에 따라서 꼭 알맞는 크기로 수직(手織)되며 색상이 다른 과일사로서 무늬를 만든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직물들은 기계직(mechanical loom)으로도 제작되며 일반적으로 수직(手織)된 것보다 더 평평하게 짜여지고 가장자리도 훨씬 평행하고 균일하게 직조된다. 과일사(pile thread)에는 보통 양모나 견을 사용하나 때로는 모헤어(mohair)나 캐시미어산 양의 털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직(手織) 양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탕천에 보통 면·양모나 동물의 털을 사용하며 기계직의 양탄자 경우에는 면·아마·황마를 바탕천으로 사용한다.

이 호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바닥에 까는데 사용하거나 때로는 실내용품(예: 벽걸이나 테이블 커버)에도 사용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카펫 가장자리에 술 fringe)이 부착되었다든지(제작 중에 부착되거나 제작 후에 붙힌 것) 용도에 따라 다르게 마무리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물품들의 기원은 주로 동양(이란·터키·투르키스탄·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중국·인도)이거나 북 아프리카(알제리·튀니지·모로코·이집트)이다.

이 호에는 과일사로 경사(經絲)의 둘레를 감아서 만들지 않고 과일사가 단순히 아래에서 루프로 되어 있는 양탄자는 제외한다(다음 그림 4와 그림 5 참조)(제5702호).

57.02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 5702.10 -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 5702.2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 5702.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5702.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570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5702.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5702.4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5702.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5702.5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5702.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5702.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57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 분류하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윌튼(Wilton)과 이와 유사한 양탄자** : 이것들은 강력하고 중후한 바탕천 위에 파일로 표면이 덮여 있거나[즉, 표면은 인접사나 직립한 술(tuft)로 이루어진다] 루프를 표면이 덮여 있다.

이 양탄자의 표면은 추가적으로 첨가된 경사(經絲)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직공정 중에서 금속 막대(rod)나 금속선(wire)을 일시적으로 삽입하여 둠으로써 추가적으로 첨가된 경사(經絲)가 직물의 표면에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루프를 절단하여 파일 양탄자를 만들며[예: 윌튼(Wilton) 등, 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형에는 파일이 단순히 위사(緯絲)의 아래에서 루프로 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 루프를 절단하지 않고 남겨두면 부르셀양탄자와 같은 루프 파일의 양탄자가 된다(그림 4와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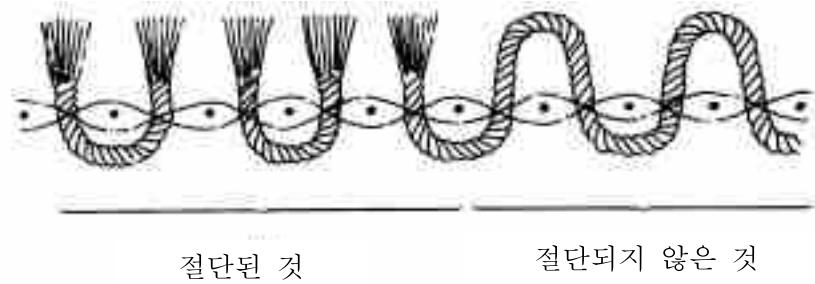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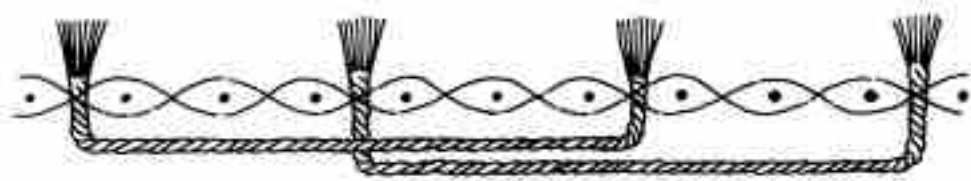


그림 5

이러한 양탄자는 무늬가 없거나 무늬가 있으며, 무늬가 있는 것은 두 가지부터 다섯 가지까지의 서로 다른 색실의 사용에 의한 도안을 제조하도록 특별히 장치한 직기(예: 자카드직기)로서 제작한다.

윌튼 양탄자는 공동의 파일사로 두 매의 직물을 한꺼번에 제작하여 만들며 제작한 후에 공동의 파일사를 절단하면 두 매의 양탄자를 얻게 된다(face-to-face Wilton).

파일사에는 보통 양모나 양모/나일론(nylon)의 혼합물을 사용하나 면·폴리아미드(polyamide)·아크릴·비스코스나 이들 섬유 혼합물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바탕천에는 대개 면·황마·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다.

- (2) **엑스민스터(Axminster) 양탄자** : 이 양탄자는 기계로 제작하는 양탄자로서 미리 결정된 색의 배열에 따라 제작 중에 연속된 위사 방향의 파일열을 삽입한다.
- (3) **셔닐(chenille) 양탄자** : 이 양탄자의 중요한 특성은 셔닐사(chenille yarn)(제5606호 해설 참조)로서 파일 표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셔닐사는 정상적인 직조방법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위사(緯絲)로 사용하며 ; 어떤 경우에는 짧은 길이의 셔닐사가 별개의 불연속 경사로 삽입되며 이는 바탕천에 의하여 위치가 유지된다.
- (4) **평직(flat weave) 양탄자** : 이것은 루프(loop)나 파일(pile)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후하고 강력하며 명백히 바닥에 까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속하는 직물과 구별된다.

이들에는 이중의 직물로 된 키더민스터(Kidderminster)나 “벨지안(Belgian)”양탄자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하며 이 조직의 무늬는 두 직물 군데군데에서 교착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러한 비교적 고급의 가정용 양탄자 이외에 이 호에는 또한 황마·코이어(coir)·사람 머리카락·종이실(paper yarn) 등으로 만든 조잡한 양탄자와 양탄자지(drugget와 같은 것)를 포함한다[보통 평직·능직·세브론(chevron)]. 이 호에는 황마사로 된 경사(經絲)와 끝과 끝을 서로 맨 웨이스트 직물의 스트립(strip)으로 만들어진 위사(緯絲)로 제작한 랙 양탄자(rag carpet)도 포함한다.

- (5) **도어 매트(mat)와 매트지(matting)** :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코코넛이나 사이잘(sisal) 섬유로 된 딱딱한 술(tuft)로 이루어져 있으며 술(tuft)은 단순히 바탕천의 경사(經絲) 아래에서 루프로 되어 있으며 ; 이들은 의도한 용도에 알맞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된다.

(6)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이와 유사한 목욕 매트(bath-mat)**

어떤 종류의 양탄자는 제5801호의 과일이나 셔닐(chenille)직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양탄자들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까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견고성이나 이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조잡성이나 대개 추가적으로 첨가된 경사(經絲)를 가지고 있는 바탕천의 단단함에 의하여 구분된다(stuffer).

- (7)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 카라마니(Karamanie)라고도 부르는 켈렘(Kelem)(또는 Khilim)은 제5805호에 대한 해설 (A)에서 설명된 수직의 태피스트리(tapestry)와 같은 제조방법으로 얻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은 앞에서 설명한 태피스트리의 조직과 동등하므로 경사(經絲)의 라인을 따라 나타나 있는 간격이 대개 동일하다. 이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무늬에 관한 한 켈렘(Kelem)은 일반적으로 꽃무늬나 잎사귀의 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직선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 앞면과 뒷면은 구별되지만 차이가 별로 없어 양면이 다 사용하기도 한다.

켈렘(Kelem)은 때로는 두 개의 긴 스트립(strip)을 함께 봉재하여 만들며, 바늘땀의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디자인 한다. 이는 가장 짧은 가장자리에만 테두리(woven end)가 있거나,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덧붙인 테두리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사(經絲)에는 방모사(woollen)를, 위사(緯絲)에는 양모사(wool)나 면사(cotton)를 사용한다.

이 호에는 켈렘 전문기술(특히 중앙유럽)에 의하여 제조하는 물품도 분류하는데 이러한 물품의 무늬는 색채가 엷은 동양의 켈렘(oriental Kelem)과 같은 형의 장식디자인으로 꾸민다.

슈맥(Schumack)은 켈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 무늬를 형성하는 하나나 두 개의 위사(緯絲)의 라인이 완성되자마자 위사(緯絲)를 전폭에 걸쳐서 추가로 투입하는데 이들 위사(緯絲)가 경사(經絲)의 간격을 없애준다.
- 무늬에 있어서는, 보통 큰 메달 모양의 세 개부터 다섯 개까지의 평판 모양의 여러색의 별(stars)로 바탕을 장식하며, 가장자리는 대개 한 개의 주요 밴드와 두 개부터 세 개까지의 보조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뒷면은 위사(緯絲)가 끊어지고 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길이가 수cm의 경사(經絲)의 한올한올(ends)로 인하여 생긴 많은 털로 덮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

슈맥(Schumack)의 위사(緯絲)는 방모사를 쓰는데 반하여 경사(經絲)는 방모사나 면사 심지어는 염소의 털로 된 것도 있다.

제11부
57.02

이와 유사한 양탄자에는 특히 슈맥(Schumack)과 제조방법이 유사한 실레(Sileh)를 포함한다. 실레(Sileh)의 무늬는 기본적으로는 둘레나 앞뒷면에 S자 모양의 모티프(motif)로 되어 있으며 동물 모양의 모티프(motif)가 전 표면에 걸쳐 흩어져 있다. 실레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에는 방모사를 사용한다[드문 경우지만 경사(經絲)는 면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조물 재료의 매트(mat)와 매트지(matting)를 **제외한다(제46류)**.

57.03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 5703.21 -- 인조잔디(turf)
- 5703.29 -- 기타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5703.31 -- 인조잔디(turf)
- 5703.39 -- 기타
- 570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터프트팅기(tufting machine)로 제작한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 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needle)과 훅(hook)의 한 조로서 동작하는 터프트팅기는 기존의 바탕천(주로 직물이나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tuft)을 만든다. 과일을 형성하는 실은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대개 도포(塗布)된 것이 건조되기 전에 직물재료(예: 황마)로 느슨하게 짜여진 부수적인 바탕천이나 폼러버(foamed rubber)로 피복된다.

이 호에는 또한 인조잔디(turf)도 분류하는데, 이는 터프트(tuft)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로서 잔디를 모방한 것이다(어떤 색상인지에는 상관없다). 인조잔디(turf)는 스포츠 경기장(예: 축구·야구·필드 하키·골프·테니스)용과 그 밖에 다른 용도(예: 조경·공항)로 실내나 실외에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는 또한 터프트팅 건(tufting gun)을 사용해 만들어졌거나 손으로 만들어진 터프트한 양탄자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터프트한 만든 바닥 깔개를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바닥 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두께·강도에 있어서 **제5802호**의 터프트한 직물과 구별된다.

57.04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5704.2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704.90 - 기타

이 호에는 펠트로 만든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펠트(felt)”에 대하여는 제5602호의 해설을 참고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보통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만든 펠트로 만든 타일(tile)
- (2) 강도를 높이거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을 밑바닥(underside)에 보강하거나 침투시킨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로 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5 -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접착 과일양탄자(bonded pile carpet) : 과일 사용표면은 기질(substrate)에 접착되거나 기질(substrate)을 형성하는 접착제에 직접 접착된다. 접착은 접착력, 가열, 이 두 부분의 결합, 초음파 용접으로 이루어진다. 과일은 단일 이장재 표면이나 두 개의 이장재 표면 사이에 접착하는데 뒤의 경우에는 분리하면 두 개의 양탄자가 된다.
- (2)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 : 루프(loop)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
- (3) “플로킹(flocking)”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탄자 : 즉, 고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도포(塗布)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이장재에 방직용 섬유를 깨끗하게 심어서 만드는 것
- (4) 니트(knitted) 양탄자(carpet)와 양탄자지(carpeting) : 이들은 일반적으로 모quette(moquette)의 외관을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모피의 외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주:

1. 이 류는 제59류의 주 제1호의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제59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5801호에는 위(緯)파일(pile)직물로서 그 부사를 절단하지 않아 직립한 파일(pile)을 가지지 않은 단계인 것을 포함한다.
3. 제5803호에서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地經絲)와 익경사(擘經絲)로 구성되며 익경사(擘經絲)가 지경사(地經絲)를 반회전, 1회전이나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緯絲)가 통과함으로써 짜인 직물을 말한다.
4. 제5804호는 제5608호에 해당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매듭이 있는 망직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폴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꿰매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細幅)직물은 제5808호로 분류한다.
6. 제5810호에서 “자수천”이란 특히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바탕천에 금속사나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시퀀(sequins)·비드(bead)·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motif)를 꿰매어서 아프리케(applique)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바느질한 태피스트리(tapestry)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805호).
7. 이 류에는 제5809호의 물품 외에 의류·실내장식용 직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의 제품을 포함한다.

총설

제5809호를 제외하고 이 류에는 여러 가지의 광범위한 방직용 섬유 물품을 분류하는데 이들의 4단위 호의 분류는 이들 물품을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재료와는 무관하다. 이들 중 일부 물품은 제11부의 총설(II)의 규정에 의한 “제품(made up)”으로 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것은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 포함한다.

제59류의 주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803호의 거즈, 제5806호의 세폭(細幅 : narrow)직물과 제5808호의 원단상으로 된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ings)으로서,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것은 제58류에서 **제외하는데** 반하여(보통 **제39류, 제40류, 제59류**), 이 류의 그 밖의 제품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처리를 한 것은 그 처리로 인하여 제39류나 제40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않는 한 이 류에 분류한다.

58.01 - 파일(pile)직물 · 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 58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면으로 만든 것
- 5801.21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 5801.22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 5801.23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 5801.26 -- 셔닐(chenille)직물
- 5801.27 -- 경(經)파일(pile)직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5801.31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 5801.32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 5801.33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 5801.36 -- 셔닐(chenille)직물
- 5801.37 -- 경(經)파일(pile) 직물
- 5801.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A) 파일(pile)직물(제5802호의 직물을 제외한다)

파일(pile)직물 : 적어도 세 가닥 이상의 연속사(series of thread)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經絲 : warp thread)와 위사(緯絲 : weft thread)가 바탕천을 형성하고 다른 한 가닥의 경사(經絲)나 위사(緯絲)가 파일을 형성하고 있는 직물이다. 이 파일은 술(tuft)이나 루프(loop)로 되어 있으며 직물의 표면의 전부나 일부를 덮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한쪽 면에만 있지만 때때로 양면에 있는 때도 있다.

경파일(warp pile) 직물(velvets · plush · moquette 등)은 위사(緯絲 : weft thread)의 방향에서 삽입된 철사 위로 파일 경사(經絲)를 용기시켜서 만든다. 이와 같이 만든 루프는 제직 중에나 제직 후에 절단된다. 그러나 때로는 루프가 있는 파일직물이나 절단하지 않은 파일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이를 절단치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이 루프나 파일을 절단하여 만든 술(tuft)은 위사(緯絲)가 위치를 고정시켜 준다.

경파일(warp pile) 직물은 또한 한 가닥의 공통 파일 경사로서 한꺼번에 두 매의 직물을 제직함으로써 얻어진다. 다음에 두 매의 직물 사이의 파일 경사를 절단함으로써 두 파일직물은 각각 분리된다.

절단된 위과일(weft pile)직물(velveteen·corduroy 등)은 일반적으로 위사(緯絲)로 만들어진 파일(pile)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사(緯絲)는 경사(經絲)의 아래를 교대로 지나고 그 다음에 두 가닥 이상의 경사(經絲)의 표면에 부상하여 파일을 만든다. 제직 후에 직물의 표면에 부상된 부분이 절단되고 절단된 끝부분이 직립함으로써 파일이 형성된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경사(經絲)에 철사를 평행하게 삽입시킴으로써 얻어지며 위(緯)파일은 제직 중에 절단된다. 파일의 술(tuft)은 경사(經絲)에 의하여 위치가 유지된다.

그 부사(float)를 절단하지 않아 직립한 파일(pile)을 가지지 않은 단계는 이 호에 포함한다 (류의 주 제2호 참조)

(B) 셔닐(chenille)직물

셔닐(chenille)직물 : 제5702호의 셔닐 양탄자와 대단히 유사하며 ; 셔닐 양탄자와 같이 파일 표면(보통 양면)은 셔닐사(chenille yarn)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으로 첨가된 셔닐사의 위사(緯絲)로 만들거나 바탕천을 제직하는 중에 경사(經絲)에 색상과 길이가 다른 셔닐사를 삽입하여 만든다.

*
* *

파일직물과 셔닐직물은 여러 가지 재료로서 만들어지며 견·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면·인조섬유는 파일용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 직물들은 평직이거나·이랑을 만들거나·무늬를 넣은 것도 있으며·제직 후에 모양을 압형할 수도 있으며 ; 무늬파일 직물은 파일이 직물 표면의 일부만을 덮고 있는 것이거나 파일의 표면이 일부는 절단되고 일부는 루프상의 파일로서 이루어진 것(ciselé velvet)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단히 다양한 도안을 형성하고 있다. 모피를 모조하여 직조한 파일직물 (예: 아스트라칸·카라쿨·모조표범가죽 등)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파일상으로 봉합하였거나 고무 가공하여 제조한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제4304호)**.

이 호의 여러 가지 직물은 제5702호의 양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까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고 실내 가구용이나 의류용으로 의도되었다는 점과 이 직물은 섬세한 재료로서 제조되었으므로 바탕천이 보다 더욱 유연하다는 사실로 양탄자와 용이하게 구별되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파일직물과 유사한 외관을 나타내지만 특수사[예: 부클레(bouclé)실]로 제직되었거나 일반 직물의 처리(예: scraping이나 teasing)에 의해 제조된 부클레(bouclé)직물·라티네(ratine)와 그 밖의 직물(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 (b) **제5802호**의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과 터프트직물
- (c) 세폭(細幅 : narrow)직물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파일 등의 직물(**제5806호**)
- (d) 파일표면이 절단되었거나 루프(loop)가 있는 메리야스 편물·스티치본딩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품(경우에 따라 **제6001호**나 **제5602호**)
- (e) 제11부의 총설 (II)에 규정한 대로 제품으로 된 파일 등의 직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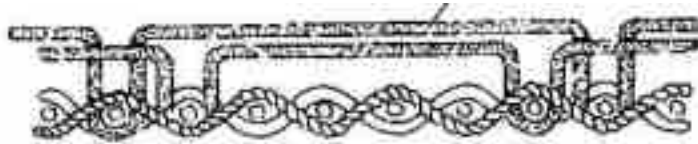
[소호해설]

소호 제5801.22호와 제5801.32호

소호 제5801.22호와 제5801.32호에서 경사(經絲)의 횡단면에 대한 다음 그림은 절단된 코르덴을 그 밖의 절단된 위(緯 : weft)과 파일(pile)직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코르덴 위사(緯絲) :

위사(緯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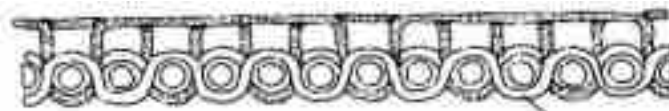
절단되지 않은 것

위사(緯絲)



절단된 것

벨벳 위사(緯絲) :



위사(緯絲)

절단되지 않은 것



위사(緯絲)

절단된 것

58.02 -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10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2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30 - 터프트(tuft)한 직물

(A)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이들 직물은 타월·목욕용 가운·비취로브(beachrobe)·레저로브(leisure robe)·토일렛 장갑 등에 사용하는 루프(loop)를 가지고 있는 파일(pile)직물로서 한 가닥의 팽팽한 위사(緯絲: weft thread)와 두 가닥의 경사(經絲: warp thread)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사(經絲) 중 한 가닥은 팽팽하며 한 가닥은 축 늘어져 있는데 뒤의 늘어진 경사(經絲)가 직물의 표면에 루프(loop)를 만든다. 직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들 두 종류의 경사(經絲)의 비율은 다르지만 보통 역경사(撈經絲: ground warp thread)의 수와 파일을 만드는 경사(經絲)의 수는 동일하다.

이 루프(loop)는 가끔 꼬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직물양면에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한쪽 면에만 있는 때도 있으며; 절단되어 있기도 한다. 이 루프는 직물의 표면을 전부 덮거나 스트립 모양·체크 모양·다이아몬드 모양이나 더 복잡한 형태로 물품의 표면을 덮고 있다. 다만, 이 호에는 오직 한쪽 면에만 파일이 있는 것으로서 루프가 모두 절단된 직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58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메리야스나 뜨개질 테리(terry)직물(제6001호)

(b) 위사(緯絲)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분선을 따라 단순 절단함으로써 인하여 별개의 술(tuft)이 달린 제품으로 변환 원단상의 직물(제6302호)

(B) 터프트(tuft)한 직물

이러한 직물은 루프(loop)나 절단된 파일(pile)의 터프트(tuft)(혹이 절단장치와 결합한 경우)를 만들기 위하여 한 조의 바늘(needle)과 훅(hook)을 가지고 이미 짜여 있는 바탕천(직물·편물·펠트·부직포 등)에 실을 삽입시켜 만든다.

이 호의 제품은 바닥갈개용으로는 부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두께·강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5703호의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 바닥갈개와 구별된다.

더욱이 이러한 직물은 직물의 이면에 일렬로 된 체인 스티치(chain stitch)를 가지고 있는 제6001호의 파일(pile)편물과 구별되며 이러한 구별은 그 특징이 바늘코(stitch)의 열이 직물 이면의 길이를 따라 러닝스티치(running stitch)의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8.03 -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거즈[때로는 레노 위브(leno weave)라고 알려져 있다]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평직거즈(plain gauze)에 있어서는 교차사(crossing thread)가 각 지경사(地經絲 : standing thread)의 좌우를 교대적으로 움직여서 교착하며 항상 위사(緯絲)의 위를 통과하되 지경사(地經絲) 밑에 위치하면서 교착하며 ; 지경사(地經絲 : standing warp thread)는 항상 위사(緯絲)의 한쪽 편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위사(緯絲)와 함께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차경사에 의해 지지된다.

이와 같은 거즈는 여러 가지 변화로 얻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차사를 서로 교차시킨다든가(소위 crocheted거즈 · Marly거즈라고 부르는 것) 교차사와 지경사(地經絲 : standing thread)에 의해서 형성된 루프에 두 가닥 이상의 위사(緯絲 : weft threads)를 끼워 넣는다거나, 매 교차사마다 두 가닥 이상의 지경사(地經絲)를 사용한다든가 반대로(vice versa) 매 지경사(地經絲)마다 두 가닥 이상의 교차사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 (1) 브로셰 거즈(broché gauze) : 이는 거즈직(織)의 바닥에 의장효과를 주기 위하여 제조과정 중에 다른 한 가닥의 사(broché thread)를 삽입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 (2) 두 부분의 비율에는 상관없이 거즈 조직 부분과 그 밖의 직물 조직의 부분으로 구성된 직물 : 이것은 보통 경사(經絲) 방향으로 뻗쳐진 줄무늬의 효과 · 체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의장효과가 있다.

거즈직물은 보통 엉성하게 짜였으며 따라서 중량이 가벼우며 ; 대개 커튼지로 사용하며 ; 특정 종류의 것은 경사(經絲)방향에 세폭의 스트립(strip)의 형태로 절단하여 셔닐사(chenille yarn)를 만든다.

여러 가지 거즈 직물은 외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도안도 대단히 다양하다. 이러한 거즈직물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브로셰(broché)나 그 밖의 직물과 이 류에 분류하는 손으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든 레이스 · 자수 · 툴(tulle) · 그 밖의 망직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주로 붕대와 드레스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평조직의 엉성하게 짜여진 평직물(plain weave)은 **포함하지 않으며** ; 가끔 보통 거즈라고 불리워지기는 하나 이것은 **제3005호**(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된 것의 경우)나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도 **제외한다(제5911호)**.

58.04 - 툴(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 · 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 5804.10 - 툴(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 기계로 만든 레이스
- 5804.2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58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5804.3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I) 툴(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이러한 물품들은 커튼 · 침대보 · 이와 유사한 가정용 실내용품 · 베일 · 숙녀복의 제조 · 자수천 등에 사용한다. 이 물품은 보통 견 · 인조섬유 · 면 · 아마 등으로서 제직된다.

(A) **툴(tulle)과 그 밖의 보빈-넷(bobbin-net) 직물** :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이루어진 직물이며 이때의 위사(緯絲)는 각개 경사(經絲)의 둘레에 끼이면서 감겨지고 한 가장자리로부터 다른 가장자리로 대각선으로 진행되는데 위사(緯絲)는 반으로 나뉘어서 한 방향과 다른 한 방향으로 직진한다(그림 1 참조). 이 위사(緯絲)는 경사(經絲)와 더불어 벌려진 망목(open mesh)을 형성하며 ; 이 망목은 육각형 · 사각형 · 다이아몬드형이다(Neuville망). 육각형의 툴(tulle)을 변형시킨 것인 메켈린(Mechlin)망은 단지 두 가닥의 경사(經絲) 사이를 길이 방향으로 지나가는 보빈사(bobbin thread)와 경사(經絲)로 이루어진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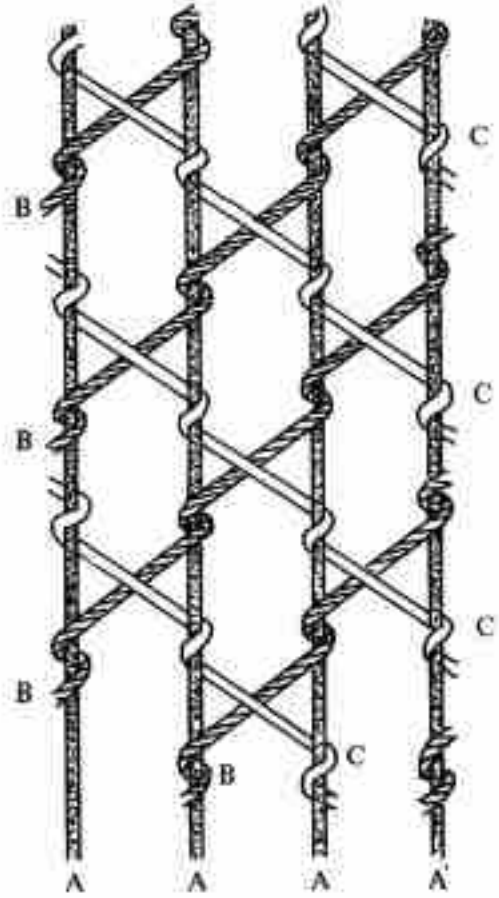


그림 1

털(tulle)
A-경사(經絲)
B와 C-오블리크(oblique) 위사(緯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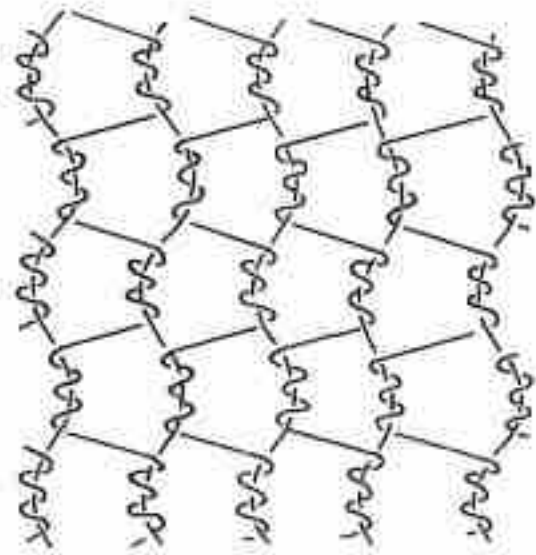


그림 2

메켈린(Mechelin)망

- (B) **튀르 보빈낫(tulle bobinot)** : 세가지 종류의 실(thread)로 구성된 특별한 튀르(tulle)이다. 이 튀르는 보통 튀르와 같이 경사(經絲)를 직선으로 평행하게 배열하고 무늬용사(무늬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가 경사(經絲)를 옆으로 따라가다가 가끔 다른 경사(經絲)(보통 인접사)를 왕래하여 사다리꼴이나 그 밖의 형태의 공간이 가끔 뒤섞여 있는 삼각형의 망목을 만들며 교차사가 경사(經絲)의 둘레에 감겨져 무늬용사를 묶어 놓음으로써 만들어진다(그림 3 참조). 도안 가운데의 불투명한 부분은 다수의 삼각형의 망목(mesh)을 밀집시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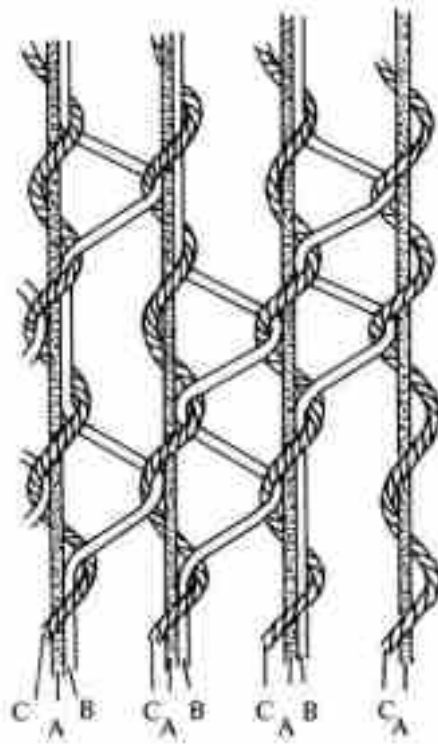


그림 3

튀르보빈낫
A-경사(經絲)
B-무늬용 사(실)
C-교차사

- (C) 세 가지의 실(thread)을 가진 망직물 : 평행한 경사(經絲) · 망목사 · 결합사로서 이루어져 있다 (예: filet net). 각 망목사는 서로 서로 다른 경사(經絲)를 선택적으로 옆으로 따라간다. 그리고 망목사가 한 가닥의 경사(經絲)로부터 다른 경사로 지나감으로써 사각형의 망목을 형성한다. 결합사는 망목사와 경사(經絲)의 일정한 부분을 묶어 망직을 이룬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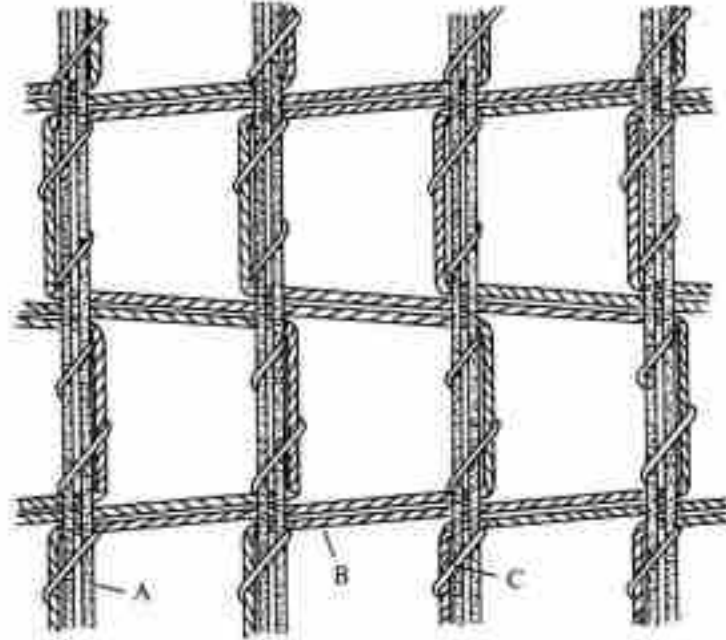


그림 4

망직물
A-경사(經絲)
B-망목사
C-결합사

- (D) **매듭 망직물(knotted net fabric)** : 균일한 정사각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의 망목(mesh)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thread)이 풀려지지 않도록 각 모퉁이를 매듭한 것이다. 이 망직물은 손으로 짜거나 기계로 제작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로서 느슨하게 제작한 것과 제5803호의 거즈
- (b) 제5608호의 망(net)이나 그물감(netting)
- (c)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5911호)

(d) 제60류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e) 제11부 총설(II)에 규정한 물품으로 된 튜(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II) 레이스(lace)

레이스는 실(thread)을 상호 꼬아서 만든 다소 복잡한 무늬요소가 망(이는 뚜렷이 공간이 있도록 가공된 바탕천을 형성하며 보통 규칙적인 크기와 모양을 가진다)이나 장식 연결코(무늬효과를 나타낸다)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도록 가공된 장식적 직물이다. 이 무늬요소와 망목 또는 장식 연결코 제직배경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무늬요소가 별도로 만들어진 뒤에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

레이스의 기본적인 특성은 의장요소가 **기존의** 바탕천 위에 가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호의 분류 목적상 레이스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레이스로 알려져 있으나(예: filet lace) 실제로는 튜(tulle)이나 망으로 된 바탕천의 망목을 채우거나 장식하여 만들거나 바탕천에 아프리카 가공을 하여 만든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바탕천의 전부나 일부가 제거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은 자수물품으로서 **제5810호**에 분류하며 또한 자수된 진정한 레이스와 아프리카 가공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크루스티드 레이스(encrusted lace)도 자수물품으로서 **제5810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손으로 만들거나 기계적으로 메리야스 편직된 공간이 있도록 가공한 물품은 **제외한다(제60류)**. 메리야스 편물은 특히 견고한 부분에 있어서의 독특한 메리야스 편직방법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다.

튜(tulle)과 거즈나 느슨하게 제직된 직물과는 달리 레이스는 뚜렷하게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를 갖고 있지 않다. 레이스는 가끔 한가닥의 실(thread)로서 만들지만 한가닥 이상의 실이 사용될 때에도 이들 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레이스는 손으로 만들거나 기계적으로 제직한다.

손으로 만든 주요한 레이스는 다음과 같다.

(A) **니들 포인트(needlepoint) 레이스** : 이 레이스는 도안이 있는 종이나 양피지(羊皮紙)의 시트(sheet) 위에 하나의 침으로 만든다. 이 레이스는 그려져 있는 무늬의 외형에 따라서 만들어지며 레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실(thread)은 무늬가 있는 종이를 꿰뚫지 않고 종이 위에 놓여져 있는데 ; 이 경우에는 프레임사(frame thread) 즉, 레이스의 최초의 골조를 형성하고 있는 실은 레이스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크로싱 바늘코(stitch)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무늬에 부착되어 있다.

니들 포인트 레이스에는 Alençon · Argentan · Venetian 등을 포함한다.

(B) **보빈 레이스(bobbin lace : pillow lace)** : 여러 개의 보빈에 감겨 있는 여러 가닥의 실(thread)을 “침(枕 : pillow)”이나 “쿠션(cushion)” 위에서 함께 꼬아서 만든다. 침(枕)이나 쿠션에는 무늬가 고정되어 있으며 또한 레이스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이 잠정적으로 꽃혀 있다.

보빈(bobbin) 레이스나 필로우(pillow) 레이스에는 Valenciennes · Chantilly · Malines · Bruges · Duchesse · Puy 등이 포함한다.

(C) **뜨개질 레이스(crochet lace)**(예: 아일랜드 뜨개질 레이스로 알려진 것) : 앞에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레이스와는 달리 뜨개질 레이스는 제작할 때 도안이나 지지물 위에 놓여 지지 않으며 ; 이것은 뜨개질 편물용 코바늘을 가지고 손으로 작업하여 만든다.

(D) **그 밖의 다양한 레이스** : 이는 다른 종류의 레이스와 다소 유사하다. 예를 들면,

- (1) **테네리페(teneriffe) 레이스** : 이는 니들 포인트 레이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다.
- (2) **레이셋가공(lacet work) 레이스** : 이는 특정 부분이 레이셋 무늬 밴드(lacet braid)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니들 포인트 레이스이며 ; 이는 침 위에 만들어 지거나 기계로 만든다.
- (3) **테팅(tatting) 레이스** : 이것은 뜨개질 레이스와 유사하나 둥근 도안으로 되어 있으며 북에 의하여 매듭되어 있다.
- (4) **마크라메(macramé) 레이스** :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의 매듭에 의하여 일련의 실(thread)을 선도사에 직각으로 고정시켜 만든 중후한 레이스이다.

기계로 만든 레이스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만든 레이스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빈 레이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의 교합방법이 상이하며 기계로 만든 레이스는 손으로 만든 레이스에 비하여 일정한 형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손으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든 레이스는

(i) **원단상으로 되어 있거나 임의의 길이로 된 스트립(strip)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ii) **모티프(motif) 모양으로 되어 있다.** 즉, 각 개별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물품은 오로지 잠옷 · 슬립 · 블라우스 · 그 밖의 의류 · 손수건 · 테이블보 · 그 밖의 가구용품과 같은 타 물품에 결합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접착되도록 고안되었다.

이 호에 분류하는 이러한 물품은 레이스제조업자에 의하여 원단상으로 직접 제조한 것이거나 큰 조각을 절단한 것이거나 여러 개로 분리한 레이스 요소를 집합한 것이다.

이 호에는 레이스의 제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 그 성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62류나 제63류에 분류한다 [예: 제6214호의 레이스 만틸라 · 제6217호의 여자용 의류에 사용하는 레이스요크(lace yoke)와 깃(collar)과 제6304호의 레이스 테이블 매트].



[소호해설]

소호 제5804.21호 · 제5804.29호와 제5804.30호

손으로 만든 것처럼 모방한 기계로 만든 레이스는 일반적으로 외관이 손으로 만든 레이스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다.

기계로 만든 레이스는 때로는 상당히 넓은 원단상으로 제조하여 완성가공 중에 스트립(strip) 모양으로 절단한다. 이 경우에 절단된 스트립의 레이스 가장자리에는 제작기계 위에서 스트립과 스트립을 연결시킨 오픈 워크(open-work) 직물의 바늘코(stitch)나 바늘코의 부분을 거의 항상 가지고 있다. 이들 바늘코나 바늘코의 부분은 레이스의 바깥쪽에 나타낸다. 이들은 보통 가장자리에 있는 선이 오목각을 이루는 곳 즉, 가장자리 그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나타난다. 이들 바늘코나 바늘코의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 레이스가 기계로 만든 것임을 분명히 가리킨다.

또한 레이스의 장식적인 모티프(motif)의 검사·릴리프(relief)[또는 윤곽(contour)]사와 능사의 흐름에 대한 검사에 의해서도 식별할 수 있다. 손으로 만든 레이스에 있어서는 이들 실(thread)들은 각 방향으로 진행하며 이들 중 어떤 것은 원래의 방향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기계로 만든 레이스에서는 이와 같은 역스텝칭은 불가능하므로 ; 따라서 이들 실(thread)은 좌나 우측으로 경사(經絲)가 될 수도 있으나 점진적인 가공진행 방향을 따라 가야만 한다.

불투명한 무늬부분에서의 필링(filling)방법은 손으로 만든 레이스와 기계로 만든 레이스간의 구별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제3의 요소다. 손으로 만든 레이스에서는 다음의 방법만을 사용한다.

- 니들 포인트 레이스의 경우에는 록-스티치(lock-stitch) 즉, 스칼롭-스티치(scallop stitch)나 버튼-홀-스티치(buttonhole stitch)
- 보빈 레이스의 경우에는 클로스 스티치(cloth stitch)나 게이트 스티치(gate stitch)

클로스 스티치는 평직과 똑같다. 게이트 스티치에 있어서는 실(thread)은 경사(經絲)로 작용하며 두 개의 중첩 시리즈로 갈라져서 약 90도의 각을 형성하며 ; 위사(緯絲)는 이들 표면의 제1종사(top series) 위와 제2종사의 밑을 교차하면서 통과한다.

기계로 만든 레이스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필링방법은 다음과 같다.

- 클로스 스티치 방법 : 위사(緯絲)를 형성하는 실(thread)은 무늬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드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부의 경우에 위사(緯絲)가 그 방향의 일부만을 교차 진행하며 다른 실은 첫번째의 실과 만나 section을 완성하며 ;
- 툴(tulle) 보빈넷을 얻는데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장착(mounting)의 방법(straight사 · 무늬사 · 타이사) ;
- 경사(經絲)와 함께 평직을 이루는 실을 망(net)에 삽입하는 방법 :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경우에는 망은 무늬가 시작하는 점에서 끝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은 손으로 만든 레이스와 기계로 만든 레이스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일부 경우에 이와 같은 고려는 특히 손으로 만든 보빈레이스와 기계로 만든 보빈 레이스와의 구별을 할 때 유일한 구별수단이다.

- (a) 손으로 짠 레이스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결함들은 간격이 불규칙하고 모양도 거의 같은 것이 없는 반면에 기계로 만든 레이스에 있어서는 기계레이스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활동의 결과로 결함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 (b) 흔히 손으로 짠 레이스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피코루프(picot loop)는 언제나 망을 만드는 실(thread)로 만들어지는데 대하여 기계로 만든 레이스에 있어서는 피코루프가 이따금 추가된다. 이러한 경우 상당히 느슨하게 붙어 있어서 레이스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서도 뽑아낼 수 있다. 그러나 손으로 만든 레이스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c) 수송과 포장방법도 손으로 만든 레이스와 기계로 만든 레이스를 구별하는 수단이 된다. 손으로 짠 레이스는 보통 20m를 초과하는 길이로는 수송되지 않으며 하나의 적송품에 있어서도 각기 모양이 다르다. 기계로 만든 레이스는 항상 20m는 초과하며 어떤 것은 500m 정도의 길이도 있으며 ; 이들 적송품 안에는 항상 무늬가 같은 것이 상당한 수량 포함되어 있다.

이 이외에 라세 레이스(lacet lace) · 르네상스레이스(renaissance lace) · 룩세이유레이스(Luxeuil lace) · 프린세스레이스(princess lace)로 알려진 “믹스드(mixed)”레이스가 있다. 이러한 레이스의 제조는 기계적으로 얻어지는 라세[lacet : 브레이드(braid)]로부터 출발하며 이 라세는 트레이싱(tracing)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도안선을 따라간다. 각을 이루는 곳에서 브레이드(braid)는 다시 접어져서 트레이싱을 따라가고 ; 겹쳐지는 부분들은 함께 꿰매며 ; 절단된 브레이드의 끝은 섬세하게 꿰매어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때 침으로 루프와 속채움(filling-in) 스티치(stitch)를 만든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브레이드(braid)가 접어 포개지고 절단과 봉합되었다는 점 이외에 이러한 레이스는 그 도안의 오목가장자리에 있는 브레이드의 잔주름으로 때때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레이스는 손으로 만든 레이스로 취급한다.

58.05 -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 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바탕천(보통 캔버스)에 손으로 짜거나 자수를 한 태피스트리(tapestry)를 분류한다.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흔히 회화적 성격을 갖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도안을 내포한 패널의 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A)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hand-woven tapestry)는 경사(經絲)를 직기 위에서 장력을 주어 늘어 놓고 색상이 다른 위사(緯絲)로 교착하여 도안을 형성하면서 직조한 직물이다.

일반적인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의 제조공정과는 달리 색상이 다른 위사(緯絲)는 도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만큼의 길이로 되어 있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위사(緯絲)는 직물의 전폭에 걸쳐서 교착되지 않으므로 ; 따라서 경사(經絲)는 위사(緯絲)의 각선에 색상이 다른 위사(緯絲)를 연속시킴으로써 덮혀진다. 위사(緯絲)의 직조되지 않은 끝은 도안의 이면에 나타난다. 이 제직 방법을 사용할 때에 있어서 경사(經絲)에 남아 있는 제직되지 않은 간격은 보통 봉합(sewing)에 의하여 보강된다.

이와 같은 태피스트리(tapestry)에는 고블랭(Gobelins)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tapestry)를 모조하여 기계(자카드나 이와 유사한 직기)로 제직한 태피스트리(tapestry)는 일반적인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제직된 직물이며 염색된 위사(緯絲)는 한쪽 귀(耳)로부터 다른 쪽 귀(耳)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물품은 **직물**로 보아 해당 호에 분류하거나 **제품**의 예로 보아 해당 호에 분류할 수도 있다.

(B)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needle-worked tapestry)[포인트 태피스트리(point tapestry)로도 알려져 있다]는 바탕천(일반적으로 사각형의 망목으로 짜여진 캔버스)과 함께 만들어지는 점이 특징으로서 그 바탕천 위에 색상이 다른 실로 자수하여 원하는 도안을 만든다.

자수의 태피스트리는 때때로 자수의 이상의 가공인 봉합 가공을 하는 것도 있으나 자수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

제5810호에 분류하는 대부분의 자수천의 경우와는 반대로 바탕천(보통 캔버스)은 끝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덮여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바늘코(stitch)는 실행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불리며, 프티포인트(petit point) · 대포인트(gros point) · 십자수(cross stitch) · 이중 십자수(double cross stitch) · 고블랭 스티치(Gobelins stitch) 등이 있다.

*
* *

태피스트리(tapestry)는 벽 커버나 의자 커버 등 주로 가구용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견 · 양모 · 인조섬유로 제조되며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로도 제조된다.

이 호에는 끝을 감쳤거나 단을 덧대거나 안을 댄 것 등도 포함되며 이브닝 핸드백·방석·슬리퍼(slipper) 등 제품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당연히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러그(rug)(**제5702호**)
- (b) 태피스트리(tapestry)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직물이나 실로 구성되는 세트(**제6308호**)
- (c)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태피스트리(tapestry)(**제97류**)

58.06 -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 5806.1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 5806.2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직물
- 5806.31 -- 면으로 만든 것
- 5806.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5806.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5806.4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A) 세폭(細幅 : narrow)직물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細幅 : narrow) 직물**을 포함한다.

- (1)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cm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하며 ;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이나 양쪽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 (2) 광폭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이나 가로 방향으로 절단(또는 찢은 것)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스트립(strip)으로서 폭이 30cm 이하인 양 가장자리를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하였거나 한쪽 가장자리는 일반적으로 직조된 단(selvedge)으로 하고 다른 한쪽 가장자리는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절단된(또는 찢어진)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광폭의 직물을 절단(또는 찢어진)하기 전에 (즉, 제직 중에) 짜여지는 거즈직의 예로 이루어지거나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를 단지 감치거나 고무가공을 하여 만드는 수도 있으며 특정의 인조섬유의 리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용융(鎔融 : fused)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한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가 풀려지지 않도록 직물을 스트립(strip)의 모양으로 절단하기 전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폭(細幅 : narrow)직물과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과의 구분은 명백히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직물을 절단(또는 찢어서)하여 각 변의 가장자리에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인지 일반적으로 직조된 단인지에 상관없이 단(selvedgs)이 없는 스트립(strip)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정상적인 직물로 분류한다[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4)항 참조].
- (3) 이음새가 없는(無繼目 : seamless) 관(管) 모양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서 펼쳤을 때 폭이 30cm 이하인 것. 그러나 스트립 모양 직물의 가장자리를 결합시켜 만들어진(봉합이나 고무접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管) 모양의 직물은 이 호로부터 **제외한다**.
- (4)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을 가로방향으로 절단하여 직물의 가장자리를 접지 않았을 때의 폭이 30cm 이하인 가장자리를 접은 스트립(strip)으로 되어 있는 바이어스 바인딩(bias binding). 이 물품은 광폭직물을 절단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직조한 단이든지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이든지 단(selvedge)이 없다.

위의 물품에는 직조된 리본의 특성을 가진 걸룬(galloon)뿐만 아니라 리본(ribbon)과 웨빙(webbing)을 포함한다.

리본은 보통 견·양모·면·인조섬유로 제조되며 탄성사나 고무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리본은 내의·부인복·모자·장식적인 깃(collar) 제조·실내용품 등에 있어서 메달 리본(medal ribbon)이나 장식적으로 묶어 매는 물품으로 사용한다.

또한 금속사를 사용한 세폭(細幅 : narrow) 직물로서 확실히 의류·가구용품·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걸룬(galloon)은 세폭 리본이며 ; 웨빙은 중후하고 강력한 세폭(細幅 : narrow) 직물로서 보통 면·아마·대마·황마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마구류의 제조, 스트랩(strap)·벨팅(belting)이나 허리띠·의자용 시트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단일의 연속제직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두 개의 테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폭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블라인드용 웨빙(webbing)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나 제5801호(velvet)까지 속하는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직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오로지 앞에서 설명한 (1)부터 (4)까지에서 설명된 기준에 의하여 이들 직물과 구분된다.

이들 물품은 물결무늬(“moiré”)나 압형되거나 날염되는 등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B) 볼덕(bolduc)

또한 이 호에는 위사(緯絲)를 사용하지 않고 경사(經絲)(세로방향으로만 병렬된 실·모노필라멘트·방직용 섬유)를 접착제로 접착시켜 만든 보통 몇mm로부터 1cm사이의 세폭(細幅) 직물(bolduc)을 포함한다. 이 볼덕은 주로 포장에 사용하며 ; 어느 것은 부인용의 엮은 모자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은 때때로 일정 간격에 사용자의 상호를 인쇄한 것도 있으나 이것은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 (b) 직조한 술 fringe)을 단 세폭(細幅) 직물·브레이드걸룬(braided galloon)과 브레이드(braid)(제5808호)
- (c) 다른 호에 열거한 세폭(細幅) 직물(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은 것)
 - (1) 스트립 모양으로 직조한 레이블·배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5807호나 제5810호)
 - (2) 램프·난로·라이터·양초·이와 유사한 물품의 심지(제5908호)
 - (3) 섬유호스나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직물(제5909호)
 - (4) 제5910호의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
- (d)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제59류의 세폭(細幅 : narrow) 직물, 특히 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만든 세폭(細幅) 직물(제5911호)
- (e) 제11부의 총설(II)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제품으로 만든 세폭(細幅) 직물[위의 (A)(2)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f)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제9607호)와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훅(hook)과 아이(eye)나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등으로서, 훅(hook)과 아이(eye)나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경우에 따라 제8308호나 제9606호)
- (g) 타이프라이터 리본(제9612호)

58.07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 직조한 것

5807.90 - 기타

다음 조건에 맞는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A)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메리야스 편물의 것을 포함한다) : 여기에는 의류·가정용 린넨(linen)·매트리스(mattress)·텐트·연질의 완구·그 밖의 상품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레이블(label)을 포함하며 ; 이들 레이블은 실리적인 것으로서 개개의 명칭이나 장식이 들어있다. 특히 이와 같은 레이블에는 제조자의 상표나 상호, 구성하는 섬유의 성상(性狀 : nature)[예: "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등]이 들어있는 상품 레이블과 각 개인(학생·군인 등)의 소속 신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레이블(label)을 포함하며 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때로는 이름의 첫 글자만이 들어있거나 그림 모양이 들어있는 것도 있으며 명칭을 손으로 써서 넣기 위하여 테두리만으로 된 공백상태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의 것을 포함한다) : 이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은 배지(badge)·기장·색상이든 휘장 등이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의류의 외부에 봉합하여 부착되는 종류의 것이다[운동·군대·지방이나 국가 배지 등과 청년단체의 명칭을 나타내는 배지·배 이름을 나타내는 선원의 모자 배지 등].

위의 물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1) 자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에 표시된 명칭이나 장식은 일반적으로 직조하거나(보통 broché work) 날염해서 만들어진다.
- (2) 원단 상태이거나 스트립 모양(보통의 경우와 같이)이거나 일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해서 독립적인 단위이어야 하며 별도의 제품으로의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자수한 것(제5810호)이나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절단한 것 이외의 별도 가공을 한 레이블(label)·배지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제6117호·제6217호·제6307호).

58.08 -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5808.90 - 기타

(A)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의 본 항에는 브레이드(braid) 뿐만 아니라 의복(예: 부인용복·군복·성직용 법복·연극용 의상 등)이나 실내용품(선박과 자동차의 설비용품을 포함한다)의 장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다랗게 일정한 길이로 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물품을 포함한다.

여기에 분류하는 물품에 훅(hook)·걸쇠·고리·링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단순히 부속물로서 부착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개의 독립된 물품으로서 가지는 물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 물품은 시퀀(sequin)·비드(bead)와 이와 유사한 부속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프리케 가공(appliqué work)로 봉합하여 부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아프리케 가공에 의하여 부착되는 물품은 자수품으로서 **제5810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평판 모양 브레이드(braid)와 관(管) 모양 브레이드

이들은 실·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스트립(strip)·이와 유사한 것을 대각선으로 교차시켜서 얻는다.

평판모양 브레이드(flat braid)에는 실(thread)이 대각선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지그-재그형식이나 더 복잡한 모양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 모양의 브레이드(tubular braid)에 있어서는 나선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실의 반은 한 방향으로 나머지 반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보통 단순하고 고정적인 형에 따라 교차된다. 어떤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가외의 실이 직물의 길이 방향으로 교차되어 직물의 가장자리를 견고하게 하거나 정돈된 순서에 따라 교차되어 무늬효과를 내기도 한다.

브레이드는 브레이드기나 스핀들기로 알려진 특수기계로 만들어진다.

브레이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레이싱(예: 장화용이나 구두용의 짠 끈)·파이핑·soutache·장식용 끈(cord)·브레이드걸룬 등을 포함한다. 관 모양의 브레이드는 섬유심(textile core)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브레이드는 의류(예: 장식적인 트림과 파이핑)나 실내용품(예: 커튼의 타이백)의 가장자리를 대거나 이들의 장식과 전선의 피복·특정 구두의 레이스·아노락(anorak)·트랙슈트 끈(cord)·드레싱가운용 끈(cord) 벨트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브레이드는 제5607호의 엮어졌거나 브레이드된 제품과 비교하여 짜임새가 느슨하고 조밀하지 않은 조직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른 호에 열거하는 브레이드(braid)와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횡단면의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나 시폭이 5mm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 밖의 조물 재료로 만든 브레이드(**제4601호**)
- (b) **제5607호**에 해당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브레이드 모조 캣거트(braided imitation catgut)
- (c) 램프·난로·라이터·양초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브레이드 심지(**제5908호**)
- (d) 호스 파이프와 이와 유사한 관(**제5909호**)
- (e) **제5910호**에 해당하는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와 벨팅
- (f) **제5911호**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포장이나 운할재료로서 공업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브레이드(braid)]
- (g)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제9607호**)와 브레이드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착시켜 놓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훅(hook)·아이(eye)·프레스 파스너(press fastener)로서 훅·아이·프레스파스너가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경우에 따라 **제8308호**나 **제9606호**)

(2) **밀라네이즈(milanaisé)와 이와 유사한 끈(cord)**

이들은 짐프사(gimped yarn)와 유사한 성질의 짐프된 물품이며 짐프 공정 중에서 가연된 실다발이나 방직용 섬유(섬유)의 조방사로 만든 중후한 심(thicker core)이 있다. 때로는 이 물품은 이미 짐프(gimped)되어진 실을 가지고 짐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물품은 기다랗게 만든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제품으로 만든 물품의 장식·드레싱가운의 허리띠·커튼 줄 등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한 금속선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 (a) 모자 프레임(frame) 제조용 철강선(milliners' wire)과 조화(造花)나 헤어컬러(hair curler)용 철강선의 줄기(**제7217호**)
- (b) 절연전선(**제8544호**)

(3) **제직 중에 가장자리에 직물 자체의 실로서 술 fringe[루프(loop) 모양의 것이거나 절단한 것]을 붙인 세폭(細幅 : narrow) 직물**

이들은 리본 직기(ribbon loom)로 짜여지며 직물의 가장자리의 장식은 위사(緯絲 : weft)를 조작하여 만들거나 로케틴(roquetin)으로 알려진 느슨한 조잡한 경사(經絲)를 사용하여 만들기도 한다.

진자의 경우에서 위사(緯絲)는 두 가닥의 외경사(外經絲)를 가지고 단(selvedge)을 형성하지 않고 외경사 넘어 바깥쪽에서 루프(loop)를 만들게 되며 ; 이 루프는 직기상의 경사(經絲)에 평행하도록 놓여진 두 가닥이나 그 이상의 철선의 둘레에 위사(緯絲)를 통과시킴으로써 만들며 철선을 제거함으로써 직물을 완성한다.

뒤의 경우 느슨한 조잡한 경사(經絲)는 일정한 간격으로 특정의 위사(緯絲)와 결합하여 귀를 만드는데 이때에 철선을 삽입한 부분의 조잡한 경사(經絲)를 지지하며 이렇게 하여 직물루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진 루프(loop)는 다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되어 있다. 때로는 이 루프가 절단되어 가장자리 술(fringe) 모양으로 되어 이것은 다음에 결절되거나 타셀(tassel)·폼퐁(pompon) 등으로 장식되기도 한다.

이 세폭(細幅)직물은 주로 실내 장식용이나 의복의 가장자리에 대는 단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에 사용한다.

피코(picot)나 고리 모양 가장자리의 리본과 쥐 이빨 모양 리본은 **제외한다(제5806호)**.

- (4) **원단상으로 된 그 밖의 장식용 트리밍(trimming)** : 이 호에는 또한 의복·실내용품 등의 장식에 사용하는데에 적합한 길이로 된 그 밖의 여러 가지 세폭(細幅)직물도 포함한다.

이들은 보통 리본이나 브레이드(braid)나 앞에서 설명한 그 밖의 물품으로 만든다. 이들은 이들 물품을 봉합하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여 만들기도 하며 둘 이상의 물품을 서로 장식적인 방법으로 조합하여 만든다[예: 가장자리에 대는 장식적인 테두리(border), 걸문(galloon), soutache braid와 조합된 리본이나 브레이드(braid), 술(tassel)이나 그 밖의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을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 방향에 따라 아프리카 자수가공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삽입한 리본이나 브레이드(braid)]

이 호에는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한 장식용 트리밍(trimming)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술(tassel)·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A)의 물품과는 달리 분리된 개별 물품이며 여기에는 모든 크기와 형태의 술(tassel)과 실내가구 끈(cord)용 장식적인 가장자리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 (1) **심(core)**(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된 것)이 방직용 섬유사로서 피복된 것. 이 물품은 때로 실의 끝을 축 늘어지도록 남겨놓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레이스로 장식되거나 작은 술(tassel)의 열(列 : row)로 장식되는 경우도 있다.
- (2) 축 늘어져 있는 끝을 **단순히** 묶거나 접어놓은 **방직용 섬유의 다발**
- (3) 방직용 섬유로 피복된 올리브형·견과류형 심(목재·종이 등으로 만든 것)으로서, 때로는 슬라이딩 링(sliding ring)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이 벌려진 것도 있다.
- (4) **폼퐁(pompon)**, 즉, 짧은 실의 중간을 매어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모우(毛羽)가 일어서도록 한 것

이러한 모든 물품은 다른 물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고리(loop)를 가지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실내가구용품에 주로 사용하며 의류용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물품은 주로 장식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각개로 분리된 독립적인 상품은 **제외한다**.

이 호의 브레이드(braid)와 트리밍(trimming)으로 만든 로제트(rosette)는 **제6217호나 제6307호**에 분류한다. 이와 동일한 재료 즉, 브레이드와 트리밍으로 만든 장식단추(frog)·견장(epaulette)과 란야드(lanyard)는 **제6217호**에 분류하며 이와 같은 재료로서 만든 구두끈·코르셋(corset) 끈 등으로서 끝을 서로 맞대어 이었거나, 풀리지 않도록 그 밖의 처리를 하여 만든 것과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든 칼끈(swordknot)은 **제6307호**에 분류한다.

제11부
58.08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견·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면·아마·인조섬유·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 등을 사용한다.

이미 언급한 제외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직조한 세폭(細幅)직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히 직조된 스트립 모양의 걸룬(galloon)과 그 밖의 트리밍(trimings)은 **포함하지 않는다(제5806호)**.

58.09 -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 사용한 직물(직물에 대한 정의는 제11부 총설(1)(C)에 규정하였다)을 분류하며 또한 제14부와 제15부의 금속사로서 제작한 직물도 분류한다. 다만, 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직물로서 따로 열거하거나 분류(특히 이 류의 앞 호들에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금속사(metal thread)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사로 구성된 직물류는 금속사나 금속드리사의 중량이 그 밖의 방직용 섬유사의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금속드리사는 단일의 방직용 재료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구성된 방직용 섬유와 금속의 중량의 총계로서 한다(제11부 총설(I)(A) 참조).

이 호에는 의류·실내용품·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 **아닌** 직물, 예를 들면, 철·강·구리·알루미늄·귀금속 등으로 만든 와이어 거즈·직조된 천(woven cloth) 등(제7115호·제7314호·제7419호·제7616호 등)을 **제외한다**.

58.10 -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자수천

5810.91 -- 면으로 만든 것

5810.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10.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자수천(embroidery)은 기존의 툴(tulle)·망·벨벳·리본·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레이스·직조된 직물·펠트(felt)·부직포 등의 바탕천 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실(embroidery thread)로 자수 가공한 것이다. 자수는 일반적으로 섬유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실[예: 금속·유리·라피아야자의 섬유(raffia) 등]로 자수가공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바탕천은 대개 완성된 자수천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 후에 도안만 잔류하고 바탕천은 제거한다(화학적으로나 절단에 의하여). 특정의 자수천은 자수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립(strip)이나 브레이드(braid)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자수천은 **기존의** 바탕천(**pre-existing ground fabric**)을 가지고 제조한다는 점에서 레이스(lace)와 구별되며 자수한 후 바탕천을 제거한 자수천과 레이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직공정(plumetis와 그 밖의 broché가공) 중에서 브로세실(broché thread)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안을 가지고 있는 직물과 자수천과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다른 물품을 자수천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이후의 해설에서 설명한다.

자수천은 손으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들기도 한다. 손으로 만든 자수천은 비교적 크기가 작다. 이에 반하여 기계로 만든 자수천은 상당히 기다랗게 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자수천은 주로 다음의 세 개 그룹으로 되어 있다.

(I)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천

이 자수천은 바탕천이 제거(예: 화학적으로나 절단에 의하여)되어 자수된 무늬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종류의 자수천은 바탕천이 없어서 제5804호의 레이스와 혼동하기 쉬우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A) 레이스(lace)는 연속된 한 가닥의 실로 만들어졌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닥이나 그 이상의 연속사가 교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직물의 양쪽 면의 외관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 종류의 “기계로 만든 자수천(machine embroidery)”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닥의 실로 되어 있으며 ; 한 가닥은 자수실(embroidery thread)이고 다른 한 가닥은 기포 밑에 있는 셔틀용 실(shuttle thread)이다. 이 셔틀용 실은 일반적으로 자수실보다 섬세하다. 그러므로 자수직물의 양쪽 면이 서로 다르며 뒷면은 평평한 반면 앞면은 부조(浮彫 : relief)되어 돌보인다.

(B) 바탕천을 절단한 자수천의 가장자리에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바탕천 실의 작은 끝이 가끔 남아 있다.

(II) 자수 후에도 바탕천이 남아있는 자수천

이것은 자수실이 보통 바탕천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리의 둘레에 무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천이다. 자수방법은 다양하며 여기에는 러닝스티치·체인-스티치·백(back)스티치·록(lock) 스티치·헤링-본 스티치·포인트 드 포스테(*point de poste*)·시드 스티치·루프스티치·단추 구멍 스티치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도안 전체는 직물의 표면에 서만 볼 수 있다. 많은 종류의 자수천은 바탕천을 절단하거나 구멍 내는 바늘(stiletto)로서 뚫어 만들거나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때로는 양쪽 함께)를 기포에서 빼냄으로써 작은 구멍이나 투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자수로서 가공하여 완성한다. 이것은 자수천을 밝게 해 주거나 자수천의 주된 매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브로더리 앵글레이스(*broderie anglaise*)와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이 있다.

단지 실을 빼내는 가공만 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특정 종류의 자수천에는 원하는 도안을 먼저 윤곽으로 만들어 놓거나 자수된 도안을 더욱 돋 보이도록 도안을 충전용 실(padding thread)로 채워 넣는다.

특정 종류의 기계로 만든 자수천, 특히 사틴 스티치 자수천(satin stitch embroidery)과 특정의 자수된 머슬린(embroidered muslin)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분류하는 브로세머슬린과 그 밖의 브로세직물(예: plumetis)과 대단히 유사한 외관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제조 방법의 특성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브로세 직물에 있어서는 브로세가 제직과정 중에서 삽입됨으로써 도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열상의 도안을 만드는 각개의 브로세사는 항상 정확하게 동일한 경사(經絲)나 동일한 위사(緯絲) 사이에 배치되는데 반하여; 자수천에서는 바탕천이 표면에 도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제직된다. 이 도안을 만드는 데에는 자수기에 바탕천을 팽팽하게 장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장치된 경우에 있어서도 직물의 장력과 위치가 자수기의 침이 바탕천의 동일한 위사(緯絲)나 경사(經絲) 사이에 정확하게 삽입되어 도안에 각각 상응하는 부분을 만들만큼 충분하고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자수천에는 왕왕 자수바늘로 바탕천의 실을 꿰뚫은 것이 있으나 브로세직물에는 있을 수 없다.

브로세직물과 자수직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자수천의 도안의 가장자리가 풀려 나온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II) 아프리케 가공(applique work)

이것은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펠트지의 바탕천 위에 다음의 것을 자수나 보통 바느질로 봉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A) 비드(bead : 작은 유리구슬)·시퀀(sequins)·이와 유사한 장식적인 부착품 ; 이 부착품은 유리·젤라틴·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것으로서 바탕천 위에 무늬나 모양을 나타내도록 봉합한다.
- (B) 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장식적인 모티프(motif) : 이 모티프(motif)는 보통 바탕천과는 서로 다른 조직의 직물(레이스도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절단되어 바탕천에 봉합되는데 ; 어떤 경우에는 바탕천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거기에 모티프(motif)로 덮는 것도 있다.
- (C) 브레이드(braid)·셔닐사(chenille yarn)나 그 밖의 트리밍(trimmings) 등 : 이것들은 바탕천 위에 붙여져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의 자수천은 다음과 같은 형태일 때 이 호에 포함한다.

- (1) **여러 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이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 : 이러한 원단상의 것이나 스트립 모양의 것은 똑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자수된 것도 있다. 이것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나중에 분리하고자 하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예: 의류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의 자수된 레이블(label)이나 절단하여 턱받이를 만들 수 있도록 일정 간격에 자수된 원단상의 것].
- (2) **모티프(motif)상의 것**: 즉, 내의, 의류제품이나 실내용품에 자수요소로서 결합되거나 아프리케(appliqué) 가공되지 않고 그 물품만 가지고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자수된 개별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물품. 이것들은 여러 형태로 절단되었거나 다른 물품으로 뒤를 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물품과 조합된다. 이것들은 배지(badge)·기장·플래시·명칭의 첫 글자·숫자·별·국가나 운동경기의 표지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비섬유재료[예: 가죽·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플라스틱·카드보드]에 자수된 것
- (b) 바늘 가공된 태피스트리(tapestry)(**제5805호**)
- (c) 자수한 테이블보·냅킨·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직물과 실로 구성된 세트(**제6308호**)
- (d) 제11부의 총설(II)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모티프(motif) **이외의** 자수천(직접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최종의 제품에 직접 자수한 것과 같이 직접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완성되어 자수가 들어 있는 별개로 된 제품. 이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물품은 제품으로 분류하며(예: **제61류·제62류·제63류·제65류**), 예를 들면, 손수건·턱받이·커프(cuff)·깃(collar)·보디스·드레스·트레이클로스·테이블-센터·맨틀피스(mantle-piece)커버·테이블 매트·커튼 등을 포함한다.
- (e) 유리섬유의 실(glass thread)로 자수된 것으로서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제7019호**)



[소호해설]

소호 제5810.10호

이 소호에는 브로더리 앵글레이스(broderie anglaise)를 **제외한다**.

58.11 -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는 원단상의 방직용 제품을 분류한다.

- (1) 한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직물·부직포)와 한 개 층의 패딩재료 [예: 웹 모양의 방직용 섬유·펠트·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발포(發泡) 플라스틱·발포(發泡) 고무 등]
- (2) 한 개 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직물·부직포나 이들과의 결합물)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needling)나 박음질(stitching)[스티치본딩(stitch-bonding)을 포함한다]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있다. 니들링이나 박음질에 의한 고정에는 직선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장식적인 무늬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바늘코(stitch)는 원칙적으로 누벼 꿰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일 뿐 그 물품에 자수의 특성을 부여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층에는 결절된 타이(knotted tie)나 접착이나 가연처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것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누비효과(quilted effect), 즉, 박음질(stitching)·니들링(needling)·스티치본딩에 의해 누벼 꿰맨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침투·도포(塗布)·피복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이들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직물이 침투·도포(塗布)·피복된 것일 수도 있다.

이들 재료는 보통 누벼 꿰맨 의류·침구·베드스프레드·클로딩(clothing)·커튼·플레이스 매트(place-mat)·테이블린넨용 언더패드[underpad(silencer)]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박음질(stitching)이나 열접착에 의해 플라스틱 시트를 패드코어(padded core)에 킬트(quilt)시킨 것(제39류)
- (b) 바느질한 물품이나 누벼서 꿰맨 방직용 섬유물품으로서 바늘코(stitch)로 된 자수 천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제5810호)
- (c) **제품으로 된** 물품(made up goods)으로서 이 부에 해당하는 것(제11부의 주 제7호 참조)
- (d) **제94류**의 침구류나 이와 유사한 실내용품으로 충전시킨 것이나 안을 부착시킨 것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주:

-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1)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관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
 - 4)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함으로써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한다)
 - 5)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
 - 6)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 나. 제5604호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 제5903호에서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하나 이상의 직물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을 조합해 만든 제품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 층을 함께 접착하여 결합한 것이다(그 횡단면에서 이들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는 상관없다).
- 제5905호에서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인 롤 모양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호는 종이(제4814호)의 뒷면이나 직물(일반적으로 제5907호)의 뒷면에 직접 고정된 섬유로 된 플록(flock)이나 더스트(dust)로 구성된 벽 피복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0류),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1)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
 - 2)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나. 제5604호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 다. 고무로 응결시킨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

6. 제5907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칩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 나. 디자인을 넣어 그림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는 제외한다)
- 다. 플록(flock)·더스트(dust)·가루 모양인 코르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부분적으로 피복함으로써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다만, 모조 파일(pile)직물은 이 호로 분류한다.
- 라. 진분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
- 마.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4408호)
- 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05호)
- 사.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14호)
- 아. 금속박(箔)을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7. 제5910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팅(belting)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나.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고무를 칩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칩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제4010호)

8.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
 - 1) 일반적으로 칩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칩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 2)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 3)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 4) 복합경사나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랫(flat)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펠트(felt)·칩투·도포(塗布 : coated)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6)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패킹용이나 윤활용의 끈(cord)·브레이드(brai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금속으로 도포·칩투·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나.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

59.01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5901.90 - 기타

(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塗布)한 것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면·아마·인조섬유로 만든 평직물에 검(gum)이나 전분질(예: starch)로서 중후하게 도포(塗布)한 것으로서 서적의 장정·상자·안경집·칼집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미표백·표백·염색·날염을 하거나 직물류 표면에 주름을 주거나 오돌도돌하게 가공하거나 압형하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용도가 유사한 직물이라도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塗布)한 것(예: 모조가죽)은 **제외한다(제5903호)**.

(2) 투사포(tracing cloth)

투사포는 보통 면이나 아마섬유의 섬세하고 조밀한 직물을 건축가나 제도자가 투사용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다소 투명하게 처리(예: 천연수지 용액 등으로)한 것이다.

(3) 회화용 캔버스

회화용 캔버스는 보통 일정한 크기의 아마·대마·면직물의 그 한쪽 면에 아마씨유(linseed oil)와 다른 물질(예: 산화아연 등)의 혼합물이 도포(塗布: coated)된 것이다. 이것은 보통 틀에 끼워 사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다. 또한 목재나 판지를 뒤에 부착시켰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4) 모자제조에 사용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 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이것은 가볍고 투명한 직물에 접착제와 충전제[예: 아교나 전분질물품과 고령토(kaolin)의 혼합물]를 침투시킴으로써 경화 가공된 직물이다. 특정 종류의 버크럼(buckram)이나 이와 유사한 직물을 경화 가공한 직물 두 매를 붙여서 만든 것도 있다. 이것들은 보통 제6507호의 모자 파운데이션 제조에 주로 사용한다.

용도가 유사한 직물이라도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塗布)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903호)**.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1)(2)와 (4)항에 언급된 물품이라도 제11부 총설(II)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9.02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902.20 -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902.90 - 기타

이 호에는 타이어코드(tyre cord) 직물을 분류하며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침지(浸漬)·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 직물은 타이어 제조에 사용하며 병렬된 필라멘트 경사(經絲)가 위사(緯絲)에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잡아 매어져 있다. 이 경사(經絲)는 항상 고강력의 나일론(nylon)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polyamide)사·폴리에스테르(polyester)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사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사(緯絲)는 그 밖의 다른 실로 구성되며 넓은 간격의 위치에서 오로지 경사(經絲)를 지탱하도록 되어 있다[강력사(high tenacity yarn)에 대해서는 제11부의 주 제6호 참조].

이 호에는 타이어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직물이나 제11부의 주 제6호의 명세에 부합하지 않는 실로 만든 직물은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 **제54류**, **제5903호**나 **제5906호**).

59.03 -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 폴리(염화비닐)의 것

5903.20 - 폴리우레탄의 것

5903.90 - 기타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1m²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1) 침투·도포(塗布)·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도포(塗布)·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침투·도포(塗布)·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거나 색채의 변화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에 해당된다. 앞에서 설명한 직물의 예로는 단순히 주름방지·방충·방축·방수를 위한 물질로 침투시킨 직물 등이 있다(방수개버딘, 방수포프린). 플라스틱을 부분 도포(塗布)·부분 피복한 결과로 생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직물류도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에 분류한다.

(2) 단단한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C부터 30°C까지에서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피복하지 않은 것

위(2)(3)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보통 **제39류**에 해당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양면을 도포(塗布)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도 도포(塗布)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거나 도포(塗布)나 피복한 결과 단순히 색채의 변화만이 판별되는 물품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에 분류한다.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셀룰러 플라스틱의 판·시트·스트립(strip)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그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제39류에 분류한다(**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plastic and textile combinations)**” 이라고 칭하는 부분의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도 분류한다.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 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대부분은 보통 착색된 플라스틱 재료로 표면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가죽의 그레인(“leathercloth”)과 같이 평활하거나 부조(浮彫) 모양의 표면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과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다른 직물류나 다른 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류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제5604호의 실, 스트립(stri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서 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도 분류한다.

이 호의 직물류는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즉, 실내용품, 핸드백·여행용구·의류·슬리퍼·완구 등의 제조, 제본용 재료, 접착성 테이프, 전기기기 제조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5811호**의 방직용 누비제품
- (b) 바닥을 덮기 위하여 플라스틱을 도포(塗布)·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4호**)
- (c) 침투·도포(塗布)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벽 피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제5905호**)
- (d) 플라스틱을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류로서 제11부 총설(Ⅱ)의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 것

**59.04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 - 리놀륨

5904.90 - 기타

(1) 리놀륨(linoleum)

리놀륨은 방직용 섬유의 바탕천(보통은 황마의 캔버스이며 때로는 면 등이다)의 한쪽 면 위에 산화아마인유·수지·고무·충전제[보통 코르크(cork)의 가루·때로는 톱밥이나 목질 가루]로 된 농후한 페이스트(paste)를 도포(塗布)한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색소안료를 페이스트에 첨가시킨다. 리놀륨은 단색이거나 모양을 넣기도 한다. 뒤의 경우에 모양은 날 염되며; 또한 상감리놀륨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색상의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든다.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코르크(cork) 가루로 만든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을 때는 코르크 양탄자(cork carpet)라고 알려진 것이 된다. 이 코르크 양탄자는 방직용 섬유를 이면에 부착한 양탄자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또한 앞에서 설명한 리놀륨제조용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4504호의 응결 코르크로 제조된 보통 거칠고 유연성이 적은 그 밖의 다른 물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리놀륨은 여러 가지 두께로 만들어 바닥에 까는데 사용하며 또한 벽이나 선반 등의 덮개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안료를 섞지 않은 리놀륨 페이스트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주로 면직물)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외관이 코르크와 같고 구두의 속바닥 제조에 사용한다.

(2)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

바닥에 까는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바탕천[펠트(felt)를 포함한다]의 한쪽 면을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도포(塗布)한 상당히 견고한 내구성 물품이다. 보통 도포(塗布)용 혼합물은 기름과 백아(白亞)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도포(塗布)한 후에 그 위에 다시 페인트로 도포(塗布)한다. 또한 이 물품은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 두꺼운 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단지 페인트로 여러 번 직접 방직용 섬유의 바탕천에 도포(塗布)시킨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보강하기 위하여 직물의 표면에도 도포(塗布)되어 있다. 이 호에는 롤 모양의 것이나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형태로 절단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뒷면에 보강재가 없이 제시하는 리놀륨 화합물의 시트판과 바닥에 까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물품은 그 구성된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류·제40류·제45류 등).

이 호에는 신발의 안창(in-sole)도 제외한다(제6406호).

59.05 -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이 호에는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 즉, 벽이나 천장 장식에 적합한 폭이 45cm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을 분류하는데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어있고, 뒷면은 종이 등(재료에 상관없다)의 재료로 부착되어 있거나 풀을 붙일 수 있도록 뒷면을 침투·도포(塗布) 등의 처리를 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평행으로 놓은 실·직물·펠트(felt)·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stich-bonded fabric)을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접착한 것
- (2) 얇은 플라스틱층 위에 놓인 평행으로 된 실·직물·레이스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접착한 것
- (3) 체인 스티치로 얇은 부직포(중간층)에 부착시킨 평행으로된 실(최상층)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접착한 것
- (4) 방직용 섬유웹(최상층)과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에 접착재로 덧붙인 실(중간층)의 세트를 체인 스티칭법으로 조합한 것
- (5)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모조 suède)으로 표면 피복한 부직포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접착한 것
- (6)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장식한 직물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부착한 것

이 호의 벽 피복재에서 방직용 섬유 표면은 착색·날염·그 밖의 장식한 것도 있으며, 이장재가 있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 표면이 그 이장된 재료의 표면을 **전부 포함하거나 일부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제39류의 주 제9호에 규정하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제3918호**)
- (b) 종이나 플라스틱을 피복한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로서 표면을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이나 분으로 직접 장식한 것(**제4814호**)
- (c)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으로 피복한 직물(보강재를 추가하였는지와 풀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도포(塗布)하였는지에 상관없다)(**제5907호**)

59.06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 기타

5906.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906.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중량에 해당하는 것

(1)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m² 이하인 것

(2) 중량이 1,500g/m²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가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
이와 같은 고무가공 직물류는 주로 방수복·방사선 보호복·압축공기용 제품·캠핑용품·위생용 물품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특정의 가구용 직물류 중에는 고무 라텍스로서 한쪽 면을 매우 얇게 도포(塗布)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방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러한 직물류는 신발(footwear)이나 차체(coachwork)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고무 접착제로 여러 층을 합친 직물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직물류의 횡단면에서는 고무 층을 볼 수 없으며 이것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포함한다.

(B)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시드한(sheathed) 제5604호의 실·스트립(stri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C) 위사(緯絲)없이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평행으로 된 경사(經絲)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로 거멍(gumming)하거나 캘린더 가공하여 응집한 직물(1m²당의 중량에 상관없다). 이 물품은 타이어·고무튜브·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belt)와 벨팅(belting)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뒷면을 댄 접착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약을 침투·도포(塗布)하였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접착테이프 (**제3005호**)

(b) 앞에서 설명한 (A)(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은 종류의 고무 가공된 직물류라 할지라도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제4005호나 제4008호**)

(c) 셀룰러고무의 판·시트나 스트립이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결합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제4008호**). 이들 물품과 이와 유사한 제5906호의 물품과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제4008호 해설(A)를 참고할 것

제11부
59.06

- (d) 일반적으로 가황고무로 피복된 방직용 섬유직물류(여러 겹으로 적층한 것을 골조(고무가공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 하고 있는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belt)와 벨팅(belting)(제4010호)
- (e) 양탄자·리놀륨·그 밖의 바닥에 까는 물품으로서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밑바닥에 접촉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무로 이장한 것(경우에 따라서는 제57류나 제5904호)
- (f)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 (g) 고무와 결합되어 있는 직물의 여러 층을 압력으로 경화시켜 만든 방직용 섬유직물류(펠트로 안을 붙인 것에 상관없다)로서 침포·인쇄용 브란켓트·이와 유사한 공업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 [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 : narrow)직물을 포함한다] (제5911호)
- (h) 제11부 총설(II)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 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

59.07 -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1)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이 그룹에는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그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1호부터 제59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이러한 판별을 하는데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 처리되었음을 판별할 수 없거나 색상의 변화만으로 그 처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전분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는 **제외하며** (류의 주 제6호 참조) 보통 이들 물품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에 해당된다. 이 호에서 **제외하는** 직물류의 예를 들면, 사이즈(size)·전분질·이와 유사한 가공제[예: 오간디(organdy)·머슬린(muslin)]를 침투시켰거나 단순히 주름방지·방충·방축·방수 등을 위하여 고안된 물질을 침투시킨 직물이 있다[예: 방수개버딘(waterproof gabardine)이나 포플린(poplin)].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직물을 포함한다.

- (A) 방수천이나 포장용포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타르나 역청질과 이와 유사한 물질로 도포(塗布)된 직물
- (B) 왁스를 도포(塗布)한 직물
- (C) 천연수지와 장뇌(樟腦 : camphor)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을 도포(塗布)·침투하였거나 기름을 침투·도포(塗布)함으로써 침투할 수 없도록 한 미세한 직물류(때때로 “타페타 시레(taffetas ciré)”라고 한다)
- (D) 기름이나 건성유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을 도포(塗布)·침투시킨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이 그룹에는 보통 면이나 아마의 직물로 한 면이나 양면에 페이스트(paste)(본질적으로 아마씨유·충전물·착색물질로 만들어진 것)를 도포(塗布)한 **유포(oilcloth)**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대마·황마·면·아마·인조섬유로 된 질기고 조잡한 직물류에 건성유와 램프 블랙을 혼합한 것을 두껍게 도포(塗布)하여 방수성을 부여한 패킹크로스(packing cloth)도 포함한다.

- (E) 불연성을 주기 위하여 규산염을 도포(塗布)한 직물류(예: 내화스크린용)
- (F) 페인트나 금속분으로서 균일한 색상으로 완전히 도포(塗布)된 직물류
- (G) 표면에 글루[고무글루나 그 밖의 것]·플라스틱·고무·그 밖의 재료를 도포(塗布)하고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吸付)한 직물류

(1) 모조스웨드(imitation suède)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이나 더스트(dust)(장섬유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제4304호**의 인조모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서 **제외한다**). 모조 파일(예: corduroy)을 생산하기 위하여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이나 분을 피복한 직물류는 이 호에 분류한다.

- (2) 코르크 가루(예: 벽 피복재용)
- (3) 유리의 가루나 미립자(예: 영화용 스크린의 “microsphere”)
- (4) 운모 가루

(H) 석유젤리(petroleum jelly)를 기본재료로 한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매스틱을 칠했던 것으로서 창끼우개용의 봉합재·지붕재료의 방수·흡통장치의 수리 등에 사용하는 직물류

이 호에는 도포(塗布)하거나[예: 방직용 섬유(섬유)의 더스트(dust)-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그려서 그림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직물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905호,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제60류**).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유견포(oil silk fabric)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포류; 고약(medicated plaster)·포대류; 석고를 도포(塗布)한 접골용 붕대로서 소매용의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제3005호**)
- (b) 감광성(感光性)의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
- (c)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4408호**)
- (d) 제11부의 총설(II)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칠투·도포(塗布)·피복된 직물
- (e) 회화용 캔버스(**제5901호**)
- (f) **제5904호**의 리놀륨과 그 밖의 물품
- (g)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천연이나 인조의 연마 재료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05호**)
- (h)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기판을 완전히 덮었거나 해당 기판의 양면을 피복한 루핑보드(**제6807호**)
- (ij)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II)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이 그룹에는 실내(interior)이나 옥외(exterior)의 풍경을 그렸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캔버스의 시트(sheet)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의 물품으로서 극장무대장치나 초상화의 배경막(back-cloth)이나 영화스튜디오의 배경막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분류한다. 이 직물류는 특정한 형태로 절단했거나 롤 모양으로 말렸거나 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틀에 설치된 것도 포함한다.

59.08 - 램프용 · 스토브용 ·ライター용 · 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직조 · 편조 · 편직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A) 방직용 섬유의 심지(textile wick)

이 호에 분류하는 심지는 평판형 · 원형 · 관(管) 모양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이것은 보통 면으로 되어 있으며 직조하거나 편직하거나 엮은 것이다. 심지어 양초나ライタ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부터 스토브(stove)나 램프에 사용하는 대형의 것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에 따라 형태와 크기가 여러 가지 있다.

이들은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였던지 삽입하기에 용이하도록 철선이나 금속태그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음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왁스를 칠한 가는 초(**제3406호**)
- (b) 광산용의 안전퓨즈와 폭파퓨즈(**제3603호**)
- (c) 방직용 섬유사 · 끈 · 배의 밧줄(cordage) 등을 단순히 꼬거나 합사하여 만든 심지. 이와 같은 심지는 실로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분류하거나 끈 · 배의 밧줄 등으로서 **제5607호**에 분류한다.
- (d) 유리섬유심지(**제7019호**)

(B)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

가스맨틀 편물(gas-mantle fabric)은 보통 라미(ramie) · 면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을 사용하여 조밀하게 편직된 세폭의 관 모양의 편물이며 화학약품(특히 질산토륨과 질산세륨)을 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C) 백열가스 맨틀(mantle)

여기에 분류하는 가스맨틀(gas mantle)은 반제품(semi-finished)[예: 앞 (B)에서 설명된 화학약품의 침투에 상관없이 편물로 만든 짧은 원통이나 주머니(sack)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완제품, 즉, 연소시켜 바탕천을 제거하고 원편물의 형태 하에서 질산염을 산화물로 치환하며 사용할 때까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콜로디온(collodion)을 침투시킨 것이 있다. 석면사(asbestos thread)를 혼입(混入)하거나 지지물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59.09 -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호스(예: 방화용 호스, 그리고 액체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이와 유사한 관(管) 모양의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두껍고 조밀하게 면·마·대마·인조섬유로 짜여진 직물로 관(管) 모양으로 제작하거나 봉합하여 만든다. 또한 기름이나 타르나 화학조제품으로 침투하거나 도포(塗布)하기도 한다.

방직용 섬유로 만든 관 모양의 물품(textile tubing)은 내부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하였거나 금속으로 방호한 것(예: 금속선을 나선형으로 감은 것)이나 한쪽 부분과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구와 같은 비섬유질부착품·노즐 등으로 붙인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내부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강하였거나 얇은 직물의 외부 시드(sheath)로 피복한 가황한 고무로 만든 튜브·파이프와 호스는 **제4009호**에 분류한다.

59.10 - 전동(transmission)용 ·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전동(transmission)용 · 컨베이어용 벨트(belt)와 벨팅(belting)은 동력의 전달이나 물품의 운반용으로 사용한다. 이것들은 보통 양모 · 면 · 인조섬유 등의 실로 제직하거나 엮어서 만든다. 폭은 아주 다양하며 앞에서 설명한 재료를 이중이나 그 이상 여러 층으로 제직하거나 서로 접착시켜서 만들며 ; 때로는 표면에 짧은 루프 파일(looped file)이 나오도록 제직되거나 가장자리를 끈(cord) 모양으로 만든다. 이것들은 보통 아마씨유 · 스톡홀름 타르 등을 침투시키거나 바니시(vernish)나 산화납(연단) 등을 도포(塗布)하기도 하여 대기 조건이나 산성(酸性) 연기 등에 의한 노화를 방지한다.

이 호에는 또한 플라스틱을 도포(塗布) · 피복 · 적층한 직조된 합성섬유[특히 폴리아미드(polyamide)]로 만들어진 벨트와 벨팅도 포함한다.

금속이나 가죽의 스트립(strip)이나 실(thread)로 보강한 것도 있다.

이 류의 주 제7호에 의하여 두께가 3mm 미만의 벨팅(belting)은 **제외하며** ; 이것들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세폭(細幅 : narrow)직물(**제5806호**), 브레이드(braid)(**제5808호**) 등으로 분류한다.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belt)[즉, 벨팅(belting)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양쪽 끝을 연결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부속품을 부착한 것]는 재료의 두께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로프나 끈이 바로 전동(transmission)용 벨트(belt)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하며 ; 이것들은 엔드리스(endless)로 되었거나 양끝을 연결시킨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belt)나 벨팅(belting)이 특정기계나 장치에 꼭 맞게 디자인하여 특정 기계나 장치와 같이 제시하는 것(실제로 기계에 부착하는지에 상관없다)(그 기계나 장치에 따라 분류된다 - 예: **제16부**)
- (b) 고무를 침투 · 도포(塗布) · 피복 ·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의 벨트(belt)나 벨팅(belting), 고무를 침투 · 도포(塗布) · 피복 · 적층한 방직용 섬유사나 로프로 만든 벨트와 벨팅(**제4010호**, 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

**59.11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1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5911.2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5911.3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5911.4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5911.90 - 기타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의 주 제1호마목]에 따라 다른 호에서 제외하며 제5911호로 분류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 벨트·성형의 차체 라이닝·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분품이나 부속품과 자동차용 양탄자(제57류)는 이 호에서 제외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A)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들 제품은 제11부의 그 밖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이 류의 주 제8호가목에 규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과 다음 (1)부터 (6)까지 열거한 물품만을 분류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針布 : card clothing)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고무·가죽·그 밖의 다른 재료(예: 플라스틱)로 도포(塗布)·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류·펠트(felt)와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 그 밖의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 스펀들(weaving spindle)(위빙 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 : narrow)직물을 포함한다]

- (2)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 이것은 거즈·레노(leno)·평직으로 된 기공성(氣孔性) 직물로서 그 망목(mesh)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크기와 형태(대개 정사각형)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그 망목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물품들은 주로 가루 등(예: 밀가루·연마가루·플라스틱가루·동물용 사료)을 거르는 체(sifting)로 사용하며 여과용과 스크린 날염 등에 사용한다. 볼팅 클로스는 보통 정련하지 않은 강연(強燃: 된 꼬임) 견사나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다.
- (3) 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예: 직조한 여과포와 봉제한 여과포)(침투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착유용이나 이와 유사한 여과용(예: 설탕의 정제, 맥주의 양조 등)과 공업의 집진장치에서 가스청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제직된 두꺼운 직물과 합성섬유의 미표백 직물[예: 나일론(nylon)]로서 전항(2)의 직물보다 얇고 조밀하게 짜여 있고 잘 구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기름 여과포 등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사람머리카락으로 된 여과포도 포함한다.
- (4) 복합견사나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랫(flat)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펠트(felt)·침투·도포(塗布: coated)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금속사[방직용 섬유와 함께 꼬거나 짐프한(gimped) 나선]는 예를 들면, 제직 중에[특히 경사(經絲)로] 삽입되거나 실 가닥 사이에 삽입되기도 한다.

다만, 금속으로 보강한 펠트(felt)는 **제외한다**(제5602호).

- (6)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패킹용이나 윤활용의 끈(cord)·브레이드(brai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이들은 그리스·흑연·활석 등으로 도포(塗布)·침투된 보통 단면이 정사각형의 것으로서 때로는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다. 도포(塗布)·침투되지 않은 끈(cord)등은 공업에서 패킹용이나 윤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8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 (1) 앞에서 설명한 (A)의 여러 가지 직물류로 만든 제품(어떤 형태로 절단했거나 봉제된 것 등) : 예를 들면, 여러 매의 직물류를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나 금속 아이릿(eyelet)을 부착한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나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frame) 위에 장착한 직물류
- (2) 제지용 기계류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용)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펠트로서 봉합장치와 결합된 것이나 엔드리스(endless) 상태의 것(**제5910호**의 기계펠트를 **제외한다**)
- (3) 모노필라멘트사 스파이럴(monofilament yarn spiral)을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2)항에 언급된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직물류나 펠트와 유사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
- (4) 펌프·모터 등에 사용하는 개스킷(gasket)과 격막(diaphragm)과 와셔(washer)(**제848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5) 구두를 광내는 기계와 그 밖의 기계용의 디스크(disc)·슬리브(sleeve)와 패드(pad)
- (6) 착유용 섬유제 백(bag)

- (7) 자카드기(Jacquard loom)나 그 밖의 직기에 사용하는 일정 길이의 끈으로서 결절·루프(loop)·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아일릿(eyelet)을 갖추고 있는 것
- (8) 직기용 픽커(loom picker)
- (9) 진공청소기용 백(bag)·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엔진용 오일 필터 등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5911.90호

모노필라멘트사 스파이럴(monofilament yarn spiral)을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서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직물류나 펠트와 유사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소호 제5911.31호나 제5911.32호에 해당되지 않고 이 소호에 분류한다.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5804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 나.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다. 제59류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품. 다만,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과일(pile)직물은 제6001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의류·실내용품·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로 만든 편물이 포함된다.
3. 이 류의 메리야스 편물과 그 제품에는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로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



소호주:

1. 소호 제6005.35호에는 중량이 1제곱미터당 30그램 이상 55그램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 당 20홀 이상 100홀 이하인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 또는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을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교차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듭으로써 편조된 편직물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A)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위편직과 경편직)

- (I) 위편직(weft knit)은 편물의 동일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실(thread)을 감아 루프의 열을 형성시켜 만든 것으로서 인접한 루프의 열을 서로 연결시켜 편목(mesh)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들 편물의 스티치(stitch) 간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으며 ; 실이 절단되었을 때는 “사다리꼴의 세로줄(ladder)”이 생긴다.
- (II) 경편직(warp knit)은 경사방향으로 수많은 실(thread)이 진행하며(즉, 편물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각 실이 만든 루프는 열을 이루고 있는 좌·우의 루프(loop)와 교대로 얽혀 루프를 형성한다. 경편직의 루프는 보통 편물의 전폭에 걸쳐서 나타난다. 특징의 경메리야스 편물은 경사(經絲)가 2열로 나누어져서 편물의 이쪽저쪽의 반대방향에서 대각선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편물은 “사다리꼴의 세로줄(ladder)”이 생기지 않는다. 경메리야스 편물에서 조그마한 조각을 절단하더라도 어느 쪽에서든지 실이 쉽게 뽑아지지 않는다. 견본으로부터 실을 뽑을 수 있을 때에는 외관상 분명하게 나타나는 루프(loop)의 열과 직각을 이루는 곳에서 경사방향 쪽으로 뽑아진다.

경편직은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스티치본딩 방식[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의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스티치본딩 방식(stitch-bonding process)은 경편기와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계는 끝이 뾰족하고 열린 코바늘(open-hooked needle)(슬라이딩 바늘)과 직조선(heald wire)로 작동한다. 이러한 바늘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가진 바늘코(stitch)를 만들게 되며 이로서 방직용 섬유의 웹(web)이나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의 웹으로부터나 예를 들면, 직물이나 플라스틱 시트의 바탕천으로부터 메리야스 편물이 제조된다. 어떤 경우에는 바늘코(stitch)가 파일(file)을 형성하거나 고정시키기도 한다(절단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스티치본딩 방식으로 결합된 누빈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811호)**.

- (2) 경메리야스 기계를 사용, 뜨개질 편물의 루프(loop)열을 경으로 하여 정해진 위치에 위사(緯絲)를 고정시켜 짜며 때때로 무늬를 나타낸 편물

위의 (I)항과 (II)항의 모든 편물은 단순하게 얽혀있거나 다소 복잡하게 얽혀진 것도 있으며 ; 어떤 경우의 메리야스 편물을 레이스와 유사한 비쳐보이는 세공(open-work)효과를 나타낸 것도 있으며 이것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편물은 일반적으로 메리야스로 짜여진(stitch) 특성(특히 딱딱하게 짜여진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레이스와 구별된다.

- (B)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 : 이것은 한 가닥의 연속된 실을 사용하여 뜨개질바늘을 가지고 손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루프(loop)를 통하여 다른 루프를 잡아당김으로써 루프의 열이 만들어지는데 루프의 집합상태에 의하여 평편직물이나 조밀하게 짜여진 장식적인 편직물, 비쳐보이는 세공(open-work)으로 한 것도 있다. 어떤 비쳐보이는 세공으로 편직된 편물 중에는 정사각형, 육각형, 그 밖의 장식적인 모양을 형성하는 루프(loop)의 체인을 가진 것이 있다.

*
* *

이 류의 물품은 두 개나 그 이상의 메리야스 침이나 한 개의 뜨개질 침을 가지고 손으로 짠다. 또한 이들은 기계에 적합한 특수한 형태의 소형침[수염 바늘(bearded needle)·스프링 바늘(spring needle)·메리야스 래취(latch)침(hosiery latch needle)·통침(tubular needle)]을 사용하여 직선식편직기나 환직기로서 편직된다.

이 류의 각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하며, 그 편물의 제조에 어느 **제11부의 방직용 섬유**가 사용되었는지와 탄성사나 고무실을 혼합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가느다란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 사용하여 편직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가 분명히 의류·실내용품·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곱이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일 수 있다.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세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방직용 섬유 웹(web)으로 방직용 섬유를 인출하여 얻은 스티치본딩 방식의 직물류(**제5602호**)
- (b) **제5608호**의 망(net)과 그물감(netting)
- (c) 편물로 만든 양탄자류와 양탄자지(**제5705호**)
- (d) 망직물과 뜨개질한 레이스(**제5804호**)
- (e)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재단한 직물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예: 가장자리를 감친 것)과 직접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품화 한 것(예: 머플러)과 특정의 모양으로 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서 별개의 품목으로 제시하거나 길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시된 것(특히 **제61류·제62류·제63류**의 제품으로 된 것)



[소호해설]

소호 제6005.21호부터 제6005.44호까지와 제6006.21호부터 제6006.44호까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표백한 것·염색한 것·서로 다른 색실의 것·날염한 것)

제11부의 소호주 제1호라목부터 (아)까지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표백한 것·염색한 것·서로 다른 색실의 것·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색으로 날염되었거나 같은 색의 다른 명암으로 날염된 실로 구성된 편물은 **서로 다른 색실의 편물**로 간주하며 염색한 편물이나 날염된 편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60.01 -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6001.10 - 롱파일(long pile) 편물
 -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 6001.21 -- 면으로 만든 것
- 6001.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6001.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 6001.91 -- 면으로 만든 것
- 6001.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6001.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5801호의 직물과는 달리 이 호의 제품은 메리야스 편물에 의하여 제조되며 다음과 같은 제조방법이 주로 사용한다.

- (1) 원형 편직기로 추가로 공급되는 실에 의하여 돌출하는 루프(loop)를 형성하는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하며 이후에 루프(loop)를 절단하여 파일(pile)을 만들며 ; 이와 같은 공정으로 표면은 벨벳과 같이 매끄러워지며 ;
- (2) 특수 경편기는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편물을 제편하며 ; 절단하면 하나의 절단된 파일을 가진 두 개의 편물로 분리 생산되고 ;
- (3) 카드(carded)한 슬리버의 방직용 섬유를 메리야스 편물로 된 바탕천(이미 구성되어 있는 바탕천)의 루프(loop)에 삽입한다[“롱파일(long pile)”편물] ;
- (4) 루프(loop)를 형성하는 방직용 섬유의 실[“모조 테리 편물(imitation terry fabric)”](총설 참조) : 이러한 편물은 뒷면에 체인스티치(chain stitch)열을 가지고 있으며 바늘코(stitch)의 열이 그 직물의 이면의 길이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러닝스티치(running stitch)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제5802호의 파일직물과 구별된다.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파일직물로서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4304호**의 인조 모피
- (b) 파일(pile)직물(**제5801호**)
- (c) 터프트(tufted)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5802호**)

60.02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6002.90 - 기타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cm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elastomeric yarn)나 고무실(rubbe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탄성사(elastomeric yarn)는 제11부의 주 제13호에 정의되어 있다. 해당 소호주에 언급된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제5402호의 해설서 하단부에 있는 소호해설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의약용 붕대 · 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 (b) 루프웨일사(loop wale-yarn)(**제5606호**)
- (c)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 · 배지(badge) · 이와 유사한 물품
- (d)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
- (e)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 · 도포(塗布) · 피복 · 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 가공한 직물류]
- (f)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또한 이 부의 총설 (II)을 참조한다)

60.03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60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6003.20 - 면으로 만든 것
- 6003.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6003.4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6003.90 - 기타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pile) 편물을 **제외한** 폭이 30cm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실의 함유 중량이 5% 미만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의약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 (b) 루프웨일사(loop wale-yarn)(**제5606호**)
- (c)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이와 유사한 물품
- (d)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
- (e)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류와 **제5908호**의 심지나 가스맨틀용의 직물류]
- (f)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또한 이 부의 총설(Ⅱ) 참조한다)

60.04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6004.90 - 기타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탄성사(elastomeric yarn)는 제11부의 주 제13호에 정의되어 있다. 해당 소호주에 언급된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제5402호의 해설 하단부에 있는 소호해설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의약용 붕대 · 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 (b) **제5807호**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 · 배지(badge) · 이와 유사한 물품
- (c) **제5810호**의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
- (d)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 · 도포(塗布) · 피복 · 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류]
- (e)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또한 이 부의 총설(Ⅱ)을 참조한다)

60.05 -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면으로 만든 것

6005.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005.22 -- 염색한 것

6005.2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6005.24 -- 날염한 것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5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직물

6005.36 --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6005.37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6005.38 --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6005.39 --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5.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005.42 -- 염색한 것

6005.4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6005.44 -- 날염한 것

6005.90 - 기타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중량이 30g/m² 이상이고 55g/m²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20홀/cm² 이상이고 100홀/cm² 이하인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나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이나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을 분류한다. 거룬(galloon) 편직기에 의해 제조된 것을 포함한 경(經)편직의 제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0류 총설 (A) (II)에 규정하고 있다.

경(經)편직 직물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개면작업을 하지 않은 전통 직물류(의류를 만들 때 사용)와는 다르며, 사다리꼴매기형의 직물류는 경(經)편직 직물류에 포함한다.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이나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메리야스나 뜨개질 한 모조레이스 같은 기계로 짠 레이스 유사품은, 마감공정에서 스트립(strip)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넓게 제조되기도 한다. 길이가 일정치 않은 스트립(strip) 모양의 것은 폭이 30cm를 초과하고, 양 가장자리가 평행이면서 끈게 만들어 진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의약용 밴드·소매용으로 포장한 밴드(**제3005호**)
- (b) **제5807호**의 메리야스나 뜨개질한 레이블(label)·배지(badge)·이와 유사한 물품
- (c) **제5810호**의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
- (d)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류와 **제5908호**의 심지(wick)나 가스맨틀(gas mantle)용의 직물류]
- (e)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또한 이 부의 총설(Ⅱ)을 참조한다)

60.06 -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6006.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면으로 만든 것
- 6006.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6006.22 -- 염색한 것
- 6006.2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 6006.24 -- 날염한 것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6006.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6006.32 -- 염색한 것
- 6006.3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 6006.34 -- 날염한 것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6006.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6006.42 -- 염색한 것
- 6006.4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 6006.44 -- 날염한 것
- 6006.90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 류의 해설에서 “위편직(weft knit)”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총설의 (A) (I)와 (B) 참조).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의약용이나 소매용 포장으로 된 붕대(**제3005호**)
- (b)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이와 유사한 물품
- (c)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
- (d)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류와 **제5908호**의 심지(wick)나 가스맨틀(gas mantle)용의 직물류]
- (e)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이 부의 총설(II)을 참조한다)

제 6 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주:

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6212호의 물품
 -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103호와 제610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슈트”란 겹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 이외의 겹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겹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 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반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이나 인조견 옷감이 있는 것)
 -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제11부
제61류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 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4.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 깃(collar)이 있을 수도 있다.

5.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6. 제6111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6111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로 분류한다.

7. 제6112호의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을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을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8.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10.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총설

이 류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과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하며 의류의 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다만,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된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서스펜더(suspenders)·가터(garter)·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제6212호)**.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직물·모피·새의 깃털·가죽·플라스틱·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있다고 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단순한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인 경우에는 관계된 류의 주[특히 모피와 새의 깃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의 주 제4호와 제67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전열식의 물품(electrically heated articles)도 이 류에 포함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정면에 트임(opening)이 있는 의류로서 원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원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의류의 재단에 의해 남성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여성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명백히 판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나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11부의 주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슈트·파자마·수영복과 같이 열거한 것으로서 세트로 포장된 의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부의 주 제14호의 적용에 있어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textile garment)”는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서는 이 류에 열거된 종류의 미완성이나 불완전 물품(article)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성형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들이 관련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을 분류하는 호와 같은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의 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은 **제6117호**에 분류한다.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의류·의류부속품·이들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모양으로 편직된 것(별개의 품목으로 제시하거나 길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시된 것)은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으로 간주하여 분류한다[제11부의 주 제7호나목과 제7호사목].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3926호 · 제4015호 · 제4203호 · 제6812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
- (b)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넥라인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의류나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한 것이 아닌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조각(**제6307호**)
- (c)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 (d) 인형용 의류(**제9503호**)



[소호해설]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의류의 분류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물품은 제11부 소호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이 류의 해당 4 단위호의 소호에 분류한다. 그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 재료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누비제품으로 만든 남성용의 아노락(anorak)의 외부표면이 60% 면(cotton)과 40%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 메리야스 편물로 만들어졌을 경우 그 아노락이 소호 제6101.20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직물이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아노락은 제6113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61.01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 면으로 만든 것

6101.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판초(poncho)를 포함한다]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 · 이와 유사한 의류[스리쿼터코트(three-quartercoat) · 그레이트코트(greatcoat) · 후드(hood)가 달린 케이프(cape) · 더펠코트(duffel coat) · 트렌치코트(trench coat) · 개버딘 · 파카 ·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6103호의 의류

(b)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제6113호)

61.02 -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2.20 - 면으로 만든 것

6102.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2.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10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61.03 -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 슈트

- 양상블(ensemble)

6103.22 -- 면으로 만든 것

6103.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3.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3.32 -- 면으로 만든 것

6103.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3.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103.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3.42 -- 면으로 만든 것

6103.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3.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

(A) 이 류의 주 제3호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에 완전한 트임(opening)이 있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나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트·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
- (b) 슈트코트나 재킷의 걸감을 구성하는 “패널(panel)”(적어도 두 개는 전면에 두 개는 뒷면)은 세로방향으로 함께 봉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 있어서 “패널(panel)”에는 소매·페이싱이나 깃은 포함하지 않고 ;
- (c) “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는 앞면이 세트를 이루는 다른 구성 부분의 걸감과 같은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면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같은 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이것 또한 세트(set)에 포함될 수 있다.

“슈트(suit)”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구성부분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의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이나 긴 바지와 짧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을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류의 주 제3호가목에서 “동일 직물(identical fabric)”이란 동일한 단일직물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직물이어야 한다.

- 조성이 동일한 직물, 즉 동일한 실-본딩기법(yarn-bonding technique)[크기가 같은 바늘코(stitch)를 가지고 있다]을 사용하며, 또한 실의 구조와 치수(예: 데시텍스 변수)도 동일하여야 하며 ;
- 색채가 동일한 직물(색상의 명암과 모양까지도 같다) ; 이들 직물에는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과 날염 직물을 포함하며 ;
- 조성이 동일한 직물, 즉 사용한 방직용 섬유재료의 백분율(예: 양모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합성섬유가 전 중량의 51%이고 면이 전 중량의 49%)이 동일하여야 한다.

(B) “남자용 또는 소년용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슈트와 **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의 의류 한 점[다만, 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나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

앙상블(ensemble)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치수가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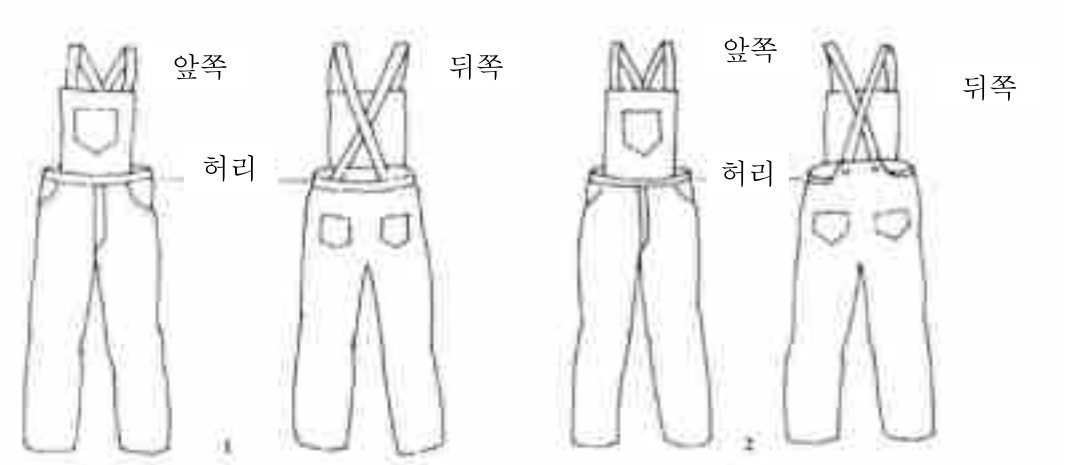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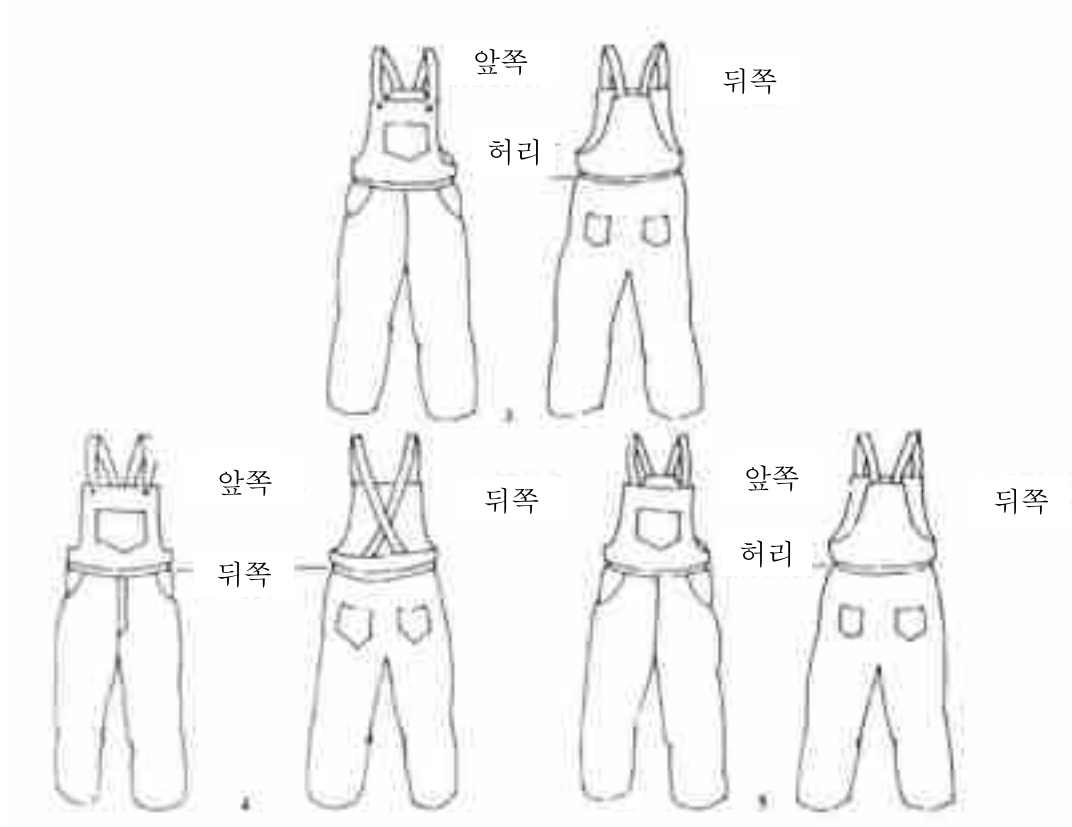
(C) “재킷이나 블레이저(jacket or blazer)”는 걸감[소매·페이싱·깃(collar)의 부착여부에 상관 없다]은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제된 세 개 이상의 패널(panel)(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류의 주 제3호가목과 (A)의 슈트코트와 슈트 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호에는 **제6101호**나 **제6102호**의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스키재킷·이와 유사한 의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제11부
61.03

(E)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bib and brace overalls)”는 다음 그림의 1부터 5까지 의류와 무릎을 덮지 않는 이와 유사한 의류를 말한다.





(F)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trousers)”를 말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따로 제시한 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제6110호)
- (b)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제6112호)

61.04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6104.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4.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앙상블(ensemble)

6104.22 -- 면으로 만든 것

6104.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재킷 및 블레이저(blazer)

6104.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4.32 -- 면으로 만든 것

6104.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4.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드레스

6104.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4.42 -- 면으로 만든 것

6104.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4.44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104.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4.52 -- 면으로 만든 것

6104.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4.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104.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4.62 -- 면으로 만든 것

6104.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4.6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여성용슈트·소녀용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구성부분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의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하는 경우(예: 스커트나 분리된 스커트와 바지)에는 스커트나 분리된 스커트를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호에서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앙상블(women’s or girls’ ensemble)”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슈트와 **제6107호**, **제6108호**, **제6109호**의 의류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의 의류 1점[다만, 두 점을 한 세트로 한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치마바지(멜빵이나 가슴받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앙상블(ensemble)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치수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또한 이 호에서는 **제6108호**의 페티코트(petticoat)와 슬립(slip)을 **제외한다**.

61.05 -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10 - 면으로 만든 것

610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것(collar)이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스포츠용 셔츠·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적어도 10cm×10cm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cm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않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것 ; **제6103호**의 재킷이나 **제6110호**의 카디건(cardigan)으로 분류
-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나 바늘코(stitch)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1호**나 **제6110호**
- 소매 없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 **제6109호**·**제6110호**·**제6114호**

61.06 -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 면으로 만든 것

6106.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6.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cm×10cm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로 인정되지 않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것 ; **제6104호**의 재킷이나 **제6110호**의 카디건(cardigan)으로 분류
-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나 바늘코(stitch)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2호**나 **제6110호**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티셔츠·싱글리트(singlet)·그 밖의 조끼(**제6109호**)
- (b)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제6113호**)
- (c) **제6114호**의 스모크(smock)과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61.07 -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11 -- 면으로 만든 것

6107.1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7.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 -- 면으로 만든 것

6107.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7.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6107.91 -- 면으로 만든 것

6107.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언더팬츠·브리프(brief)·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vest)는 **포함하지 않는다(제6109호)**.

61.08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 · 나이트 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108.1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8.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브리프(brief)와 팬티

6108.21 -- 면으로 만든 것

6108.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8.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 면으로 만든 것

6108.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8.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6108.91 -- 면으로 만든 것

6108.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8.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égligé) · 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vest)는 **포함하지 않는다(제6109호)**.

61.09 -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 면으로 만든 것

61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 · 정방형 · 보트 모양 · 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 · 편직 ·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 · 그림 · 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 ·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제6105호**의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셔츠
- (b) **제6106호**의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블라우스 · 셔츠 · 셔츠블라우스

61.10 - 저지(jersey) · 풀오버(pullover) · 카디건(cardigan) ·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 -- 양모의 것

6110.12 --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6110.19 -- 기타

6110.20 - 면으로 만든 것

6110.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10.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 · 풀오버(pullover) · 카디건(cardigan) ·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봉제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를 포함한다. 다만, 이들 봉제된 웨이스트코트가 슈트의 구성요소 중 한 요소로서 **제6103호**나 **제6104호**의 남성용 · 소년용의 슈트나 여성용 · 소녀용의 슈트와 함께 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제6101호**나 **제6102호**의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로서, 일반적으로 날씨 변화에 대한 보호용으로 모든 다른 의복 위에 걸치게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6110.12호

소호 제5102.1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을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61.11 -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 면으로 만든 것

6111.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류의 주 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baby’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y)”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마티네 코트(matinée coat)·픽시 슈트(pixie suit)·롬퍼스(rompers)·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tights)·유아용의 털실 신(baby’s bootees)(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봉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제6111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111호**로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6호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

- (a)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의 유아용의 보닛(baby’ bonnet)(**제6505호**)
- (b)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제9619호**)
- (c) 이 표의 그 밖의 다른 류에 열거된 유아용의 의류 부속품

61.12 -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트랙슈트

6112.11 -- 면으로 만든 것

6112.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2.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2.20 - 스키슈트

- 남자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여자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2.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트랙슈트(track suit) : 즉, 두 부분으로 구성된 편물로 만든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표면에 털이 곤두서 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주로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

트랙슈트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즉 :

- 첫 번째 의류 한 점은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으며 허리나 약간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온다. 이 옷은 긴 소매의 끝단에 꼴이 진(ribbed) 밴드 · 탄성밴드 · 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조임끈(drawstring)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이 옷의 밑 부분에 있을 수 있다. 이 옷의 전면이 일부나 전부의 트임(opening)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는다. 이 옷은 후드(hood) · 깃(collar) · 주머니가 붙어 있거나 붙어있지 않을 수 있다.
- 두 번째 의류 한 점(바지 한 벌)은 폭이 좁거나 넓은 것으로서 신축성의 꼴이 진 허릿단 · 조임끈(drawstring)이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허리부분에 트임(opening)이 없어 단추나 그 밖의 닫는 장치가 없다(주머니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바지에는 다리 밑 부분(대개 발목까지 내려옴)에 꼴이 진(ribbed) 밴드 · 고무 밴드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풋스트랩(footstrap)이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스키슈트(ski suit)” : 즉,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 의류로 인정되는 것

다음의 하나로 구성된다.

- (1) “스키 오버올(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이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는 것도 있다]

(2) “스키앙상블(ski ensemble)” (소매용으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 짧은 바지(breeches)나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앞에서 설명한 (1)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올과 오버올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 · 스타일 ·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 치수에 있어서도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C) 수영복(원피스나 투피스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목욕용 의상 · 수영팬티)
(신축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61.13 - 의류(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 · 방수복 · 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제품이 **일견**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111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류의 누비 제품으로 만든 의류(일반적으로 **제6101호나 제6102호**)(이 류의 총설 끝부분에 있는 소호 해설 참조)
- (b)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장갑류(**제6116호**)와 메리야스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 부속품(**제6117호**)

61.14 -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 - 면으로 만든 것

6114.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14.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앞치마 · 보일러 슈트(작업복) · 스모크(smock) · 그 밖의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 · 공장근로자 · 외과의사 등이 입는 종류의 것
- (2) 성직자 등의 종교적인 제복[예: 승려복 · 카속(cassock) · 롱(cope) · 수단(soutane) · 서플리스(surplice)]
- (3) 직업용이나 교수의 가운과 외의류
- (4) 항공대원 등이 사용하는 특수의류(예: 항공대원용의 전열식 의류)
- (5) 특정의 스포츠 · 댄싱 · 체조용에 사용하는 특수복(팔꿈치 · 무릎 ·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나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펜싱복 · 자키(기수)의 실크옷 · 발레스커트 · 레오타드). 그러나 스포츠나 게임용 보호 장비(예: 펜싱용 마스크와 가슴받이 · 아이스하키 팬츠 등)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506호)**.

61.15 -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115.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115.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5.3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6115.94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5.95 -- 면으로 만든 것

6115.96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5.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구분 없이 다음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물품을 분류한다.

(1) 발과 다리(호스)를 덮도록 디자인하거나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2) 스타킹과 양말(ankle-socks를 포함한다)

(3) 속양말(주로 방한용에 사용하는 것)

(4)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5) 스타킹의 발밑이나 발뒤꿈치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겹양말

(6)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붙이지 않은 신발류(유아용 털실 신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미완성 스타킹 · 양말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유아용의 스타킹 · 양말 · 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붙이지 않은 털실 신(**제6111호**)

(b)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스타킹 · 양말 등(보통 **제6217호**)

- (c) 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붙인 메리야스 편물의 신발(제64류)
(d) 레깅스·각반[바닥이 없는 “등산용 스타킹(mountain stockings)”을 포함한다](제6406호)



[소호해설]

소호 제6115.10호

소호 제6115.10호에서 “단계압박 양말류(graded compression hosiery)”란 발목부분에서 압박 강도가 가장 크고 다리 위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혈액 순환을 돕는 양말류를 의미한다.

61.16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 기타

6116.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6.92 -- 면으로 만든 것

6116.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6.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장갑(glove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한 장갑·아래팔이나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미완성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장갑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체의 장갑·병어리 장갑으로 모피나 인조모피로서 안을 붙였거나 외부로 모피나 인조모피로 붙인 장갑(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제4303호**나 **제4304호**)

(b) 유아용의 장갑류(**제6111호**)

(c)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체가 아닌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장갑과 병어리장갑(엄지손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것)(**제6216호**)

(d) 마사지나 화장용의 마찰“장갑(gloves)”(**제6302호**)

61.17 -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 -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117.80 - 그 밖의 부속품

6117.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제품으로 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체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제6212호** 제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 (2) **넥타이류(tie, bow tie, cravat)**
- (3) **드레스 쉬일드(dress shield)·어깨패드(shoulder pad)와 그 밖의 패드**
- (4) **여러 가지의 벨트(탄약대를 포함한다)와 휘장(예: 군대용이나 성직자용)**: 신축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진주와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으로 장식하였거나 귀금속으로 만든 버클(buckle)이나 그 밖의 부속물이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 (5) **머프(부인용의 토시)**: 단순히 외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장식한 머프를 포함한다.
- (6) **소매 보호용 덮개**
- (7) **무릎패드(제9506호의 스포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8) **레이블(label)·패지(badge)·기장·“중군휘장(flash)”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5810호의 자수한 모티프(motif)는 제외한다]**: 이것은 특정 모양과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단순히 특정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5807호**에 분류한다).
- (9) **레인코트나 이와 유사한 의류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감으로 분리하여 제시한 것**
- (10) **주머니·소매·깃(collar)·여성용 깃(collarette)·윙플(wimple)·여러 가지 종류의 장식구 (예: 로제트·바우·러시·프릴·플라운스)·보디스프린트·자보·커프스·요크·리펠·이와 유사한 물품**
- (11) **손수건**
- (12)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6111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의 유아용 의류부속품
- (b)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제6212호**)
- (c) 직업적인 용도의 벨트(예: 창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전기기술자용 벨트)나 의류용이 아닌 로제트(rosette) (**제6307호**)
- (d)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자(**제6505호**)와 모자의 부착물(**제6507호**)

- (e) 새의 깃털로 만든 트리밍(trimming)(제6701호)
 - (f) 제6702호의 인조의 꽃·꽃잎이나 과실의 트리밍(trimming)
 - (g) 프레스 파스너의 스트립(strip)과 훅(hook)이나 아이(eye)가 붙은 편직 테이프(경우에 따라 제6001호·제6002호·제6003호·제8308호·제9606호)
 - (h)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

제 6 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주:

1. 이 류는 방직용 섬유 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 나. 정형외과용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203호와 제620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슈트”란 걸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이 외의 걸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걸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짧은 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 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건이나 인조견 옷감이 있는 것)
 -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는 제외한다)

제11부
제62류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 양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양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 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 4.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 깃(collar)이 있을 수도 있다.
- 5. 제6209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유아용 의류와 이들의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 나. 제6209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209호로 분류한다.
- 6.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
- 7. 제6211호의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 나. "스키양상블(ski 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 "스키양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 "스키양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8.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인 스카프와 이와 유사한 물품 중 각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손수건(제6213호)으로 분류하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6214호로 분류한다.
-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원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원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10.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총설

이 류에서는 제50류부터 제56류, 제58류와 제59류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하며 펠트(felt)나 부직포(nonwoven)는 포함한다]로 만든 남성용, 여성용이나 어린이용 의류, 의류부속품과 의류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제621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의류부속품·부분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모피·우피·가죽·플라스틱·금속으로 만든 의류 부속품과 부분품이 있는 경우에도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단순한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은 관계 류의 주[특히 모피와 새의 깃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의 주 제4호와 제67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전열식의 제품(electrically heated article)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정면에 트임이 있는 의류로서 원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만든 것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에 원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만든 것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의류의 재단에 의해 남성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여성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명백히 판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11부의 주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의류는 소매용으로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4단위 호에 열거한 것, 예를 들면, 슈트·과자마·수영복과 같이 세트로 포장한 의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부의 주14의 규정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textile garment)”는 제6201호부터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또한 이 류에 열거한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도 분류하며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의 모양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제6212호의 제품이나 그 부분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의 모양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미완성이나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을 분류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의 제품을 **제외한다**)은 **제6217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3926호·제4015호·제4203호·제6812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
- (b)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넥라인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의류나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한 것이 아닌 방직용 섬유의 직물 조각(**제6307호**)

- (c)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 (d) 인형용 의류(제9503호)



[소호해설]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제품으로 만든 의류의 분류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제품으로 만든 물품은 제11부 소호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이 류의 해당 4단위 호의 소호에 분류한다. 그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방직용 섬유의 재료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남자용 누비 아노락(anorak)의 외부표면이 60% 면과 40%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 직물로 만들어졌을 경우 그 아노락이 소호 제6201.30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직물이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아노락은 제6210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62.01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1.30 - 면으로 만든 것

6201.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101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직물류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 (제6210호).

62.02 -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2.30 - 면으로 만든 것

6202.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2.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102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직물류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 (제6210호)**.

62.03 -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6203.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3.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3.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앙상블(ensemble)

6203.22 -- 면으로 만든 것

6203.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3.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3.32 -- 면으로 만든 것

6203.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3.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203.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3.42 -- 면으로 만든 것

6203.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3.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직물류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 (제6210호).

**62.04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
(breeches) ·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6204.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4.12 -- 면으로 만든 것

6204.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4.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앙상블(ensemble)

6204.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4.22 -- 면으로 만든 것

6204.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4.32 -- 면으로 만든 것

6204.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4.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드레스

6204.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4.42 -- 면으로 만든 것

6204.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4.44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204.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4.52 -- 면으로 만든 것

6204.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4.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204.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4.62 -- 면으로 만든 것

6204.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4.6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직물류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
(제6210호).

62.05 -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 면으로 만든 것

6205.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207호의 나이트셔츠(nightshirt)·싱글리트(singlet)·그 밖의 조끼(vest)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셔츠(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것과 같은)를 분류하며 깃(collar)을 분리하는 셔츠·드레스셔츠·스포츠셔츠·레저셔츠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6201호**의 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맨밀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제6203호**의 재킷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허리아래 주머니가 있는 의류를 **제외한다**. 또한 소매가 없는 의류도 **제외한다**.

62.06 -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 · 셔츠블라우스

6206.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206.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6.30 - 면으로 만든 것

6206.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6.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 · 셔츠 · 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 싱글리트(singlet)나 그 밖의 조끼(**제6208호**)

(b) 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직물류로 만든 의류(**제6210호**)

(c) **제6211호**의 스мок(smock)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62.07 -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brief)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 -- 면으로 만든 것

6207.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 -- 면으로 만든 것

6207.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7.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6207.91 -- 면으로 만든 것

6207.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 속옷[싱글리트(singlet) ·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brief)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

위와 같은 종류의 의류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경우에 따라 **제6107호**나 **제6109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62.08 -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8.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 면으로 만든 것

6208.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8.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6208.91 -- 면으로 만든 것

6208.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8.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속옷[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égligé) · 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

이와 같은 종류의 의류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경우에 따라 **제6108호**나 **제6109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호에는 브라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 ·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6212호)**.

62.09 -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 면으로 만든 것

6209.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baby's garment and clothing accessory)"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마티네 코트·픽시슈트·롬퍼스·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즈(tights)·유아용의 털실신(baby' bootee)(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로 접착하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붙인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제6209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일견**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209호**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5호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

- (a) 유아용의 보닛(baby bonnet)(**제6505호**)
- (b)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제9619호**)
- (c) 이 표의 그 밖의 다른 류에 열거한 유아용의 의류 부속품

62.10 - 의류(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6210.10 - 제5602호나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 6210.20 - 그 밖의 의류(제6201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 6210.30 -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 6210.4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 6210.5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 · 부직포[침투 · 도포(塗布) · 피복 · 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 · 방수복 · 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일견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의류(**제4818호**)
- (b)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 제품으로 만든 의류(일반적으로 **제6201호나 제6202호**)(이 류의 주 총설 끝부분 소호주 해설 참조)
- (c) 의류부속품(예: **제6216호**의 장갑류)

62.11 -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 수영복

6211.11 -- 남성용이나 소년용

6211.12 -- 여성용이나 소녀용

6211.20 - 스키슈트

-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 면으로 만든 것

6211.3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11.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 -- 면으로 만든 것

6211.4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11.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의 트랙슈트는 안에 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위사(緯絲)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원단상태의 직물도 포함하는데 이러한 직물을 더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절단만 하면 로인클로스(loin-cloth)를 얻을 수있다. 또한 분리된 로인클로스도 이 호에 포함한다.

62.12 -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s) · 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 - 브래지어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6212.30 - 코르슬렛(corselette)

6212.90 - 기타

이 호에는 신체지지 의류로 사용하거나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도록 고안된 종류의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재료로 만든다(신축성이 있는지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여러 가지의 브래지어
- (2) 거들 · 팬티거들
- (3) 코르슬렛(corselette)(거들과 팬티거들과 브래지어의 결합 물품)
- (4) 코르셋(corset) · 코르셋 벨트 : 이것은 보통 유연한 금속이나 플라스틱 지지물로 보강하고 즐라매거나 훅(hook)에 의하여 고정한다.
- (5) 서스펜더 벨트 · 생리대 · 서스펜서리 봉대 · 서스펜더 잭스트랩(jack-strap) · 브레이스(brace) · 서스펜더(suspenders) · 가터(garter) · 셔츠의 팔소매를 지지하는 밴드(arm-band)와 완장(armlet)
- (6) 남성용 보디 벨트(언더팬츠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7) 임신부용 · 출산후용이나 그 밖의 지지용이나 교정용 벨트. 그러나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해당 **제9021호** 해설 참조).

위에서 설명한 모든 제품은 여러 가지의 장식물(예: 리본 · 레이스 등)로 장식할 수 있고 비섬유 재료(예: 금속 · 고무 · 플라스틱 · 가죽)의 부속품을 부착할 수 있다.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을 만들기 위해 바늘코(stitch)의 수나 크기를 증감시켜 직접 특정 모양으로 편직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제품과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제시할 때 단일 물품으로 절단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전부 고무로 만든 코르셋(corset)과 벨트(belt)를 **제외한다(제4015호)**.

62.13 - 손수건

6213.20 - 면으로 만든 것

621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의 물품은 각 변의 길이가 60cm 이내의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이다(류의 주 제8호 참조). 이 물품은 보통 손수건이며 스카프형의 정사각형으로서 머리에 쓰거나 목에 감거나 허리에 장식적으로 두르기도 한다. 손수건이나 스카프형의 정사각형의 각 변은 직선이나 부채꼴 모양으로 감치거나 접거나 테를 두르거나 술(fringe)을 붙였으며 이 경우 술은 보통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로 이루어져 있다. 술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변의 길이에 술(fringe)의 길이를 포함한다.

이 호의 손수건은 레이스만 가지고 만든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다수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원단상의 직물을 포함하는데 이 직물은 단순히 절단선[경사(經絲)나 위사(緯絲)가 띄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을 따라서 절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고 손수건이나 스카프로서 적당한 술이 달린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 호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에 추가하여, **미완성**의 물품에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의 공정을 거친 직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손수건(**제4818호**)
- (b)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단순히 절단한 부직포(**제5603호**)
- (c) 단순히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자수 직물로서 각 가장자리를 미완성했거나 술(fringe)을 부착하지 않은 것(**제5810호**)
- (d)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서 어느 변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하는 것과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이 아닌 형태의 스카프(**제6214호**)

62.14 -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214.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14.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14.40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214.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숄(shawl)** : 이 물품은 보통 정사각형 · 삼각형 · 원형이며 머리나 어깨를 충분히 덮는다.
- (2) **스카프와 머플러** : 이들은 보통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이며 보통 목에 감는다.
- (3) **만틸라(mantilla)** : 이것은 보통 레이스로서 만든 가벼운 숄(shawl)이나 스카프의 일종으로서 머리와 어깨에 걸치는 부인용의 것이다.
- (4) **베일(veil)** : 이것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고 보통 가볍고 투명한 재료나 망지로 만들거나 때로는 레이스로 만들며 장식적 용도나 실용적인 용도[예: 결혼 · 애도(mourning) · 종교적인 베일과 이와 유사한 베일 · 모자와 안면의 베일 등]에 이용한다.

이 제품의 가장자리는 보통 감치거나 말았거나 자수했거나 술 fringe)을 붙인 것이다.

이 호에는 또한 원단상태의 직물로서 일정 간격을 두고 짜지 않고 띄어 있는 부분을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이 호에 분류하는 술이 달린 제품을 만들도록 고안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단순히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부직포(**제5603호**)
- (b) 단순히 숄(shawl) · 스카프 형태로 절단된 자수 직물로서 각 가장자리를 가공하지 않았거나 술 fringe)을 붙이지 않은 것(**제5810호**)
- (c)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숄(shawl) · 스카프 등(**제6117호**)
- (d) 정사각형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서 각 변의 길이가 60cm 이하인 것(**제6213호**)
- (e) 군용이나 성직자용의 견장(**제6217호**)

62.15 - 넥타이류

6215.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21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1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사용하는 타이(tie)·나비넥타이(bow tie)·크러벳(cravat)·스톡(stock)을 분류하며 깃(collar)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에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타이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모형으로 재단해 놓은 직물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십자형(on the cross)”으로 절단한 타이 재료의 스트립(strip)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타이·나비넥타이와 크러벳(cravat)(**제6117호**)

(b) **제6217호**의 라베트(rabat)·자보(jabot)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6 - 장갑류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 분류한다.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공업 분야 등에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장갑도 포함한다.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수세미로 만든 마찰장갑(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602호**)

(b)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장갑류(**제4818호**)

62.17 -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 부속품

6217.90 - 부분품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제6212호**의 물품의 부분품 **이외의**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의류의 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드레스 쉬일드(dress shield)** : 이 물품은 보통 고무 가공된 직물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서 피복된 고무로 만든 것이다. 플라스틱만으로 만든 물품이나 고무만으로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각각 **제3926호**와 **제4015호**).
- (2) **어깨용 패드(shoulder pad)나 그 밖의 패드** : 이것은 보통 워딩(wadding)·펠트(felt)·섬유의 웨이스트를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피복하여 만든다. 방직용 섬유로 피복되지 않고 고무[보통 셀룰러고무]로 만든 어깨용 패드나 그 밖의 패드는 **제외한다(제4015호)**.
- (3) **여러 가지의 벨트(탄약대를 포함한다)와 휘장(예: 군대용이나 성직자용)** : 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는 진주와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으로 장식하거나 귀금속으로 만든 버클(buckle)이나 그 밖의 부속물을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 (4) **머프(muff)** : 외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단순히 장식한 머프를 포함한다.
- (5) **소매 보호용 덮개**
- (6) **선원의 깃(collar)**
- (7) **전장·완장 등**
- (8) **레이블(label)·배지(badge)·기장·중군휘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5810호의 자수된 모티프(motif)는 제외한다]** : 이것은 특정 모양과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에 한정한다(단순히 특정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5807호**에 분류한다).
- (9) **장식용 단추·끈 등**
- (10) **레인코트나 이와 유사한 의류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감으로서 분리하여 제시한 것**
- (11) **주머니·소매·깃(collar)·여성용 깃(collarette)·웜플(wimple)·여러 가지 종류의 장신구** 예: (로제트·바우·러시·프릴·플라운스)·**보디스 프런트·자보**[깃(collar)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키프스·요크·리펠·이와 유사한 물품**
- (12) **양말류(stockings, socks and sockette)**(레이스의 것을 포함한다)와 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로 접착하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붙인 것이 아닌 신발[유아용 털실신(baby's booties)을 제외한다]

그러나 특정의 제품으로 된 트리밍(trimnings)[예: 폼퐁(pompon)과 타셀과 레이스나 자수의 모티프(motif)]은 제58류에 분류하며 또한 보통 원단상태의 트리밍도 **제58류**에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종종 레이스(lace)나 자수천(embroidery)으로 만들며 직접 특정 형태로 만든 것이나 제5804호나 제5810호의 레이스나 자수직물로부터 만든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제6209호**의 유아용(baby)의 의류부속품
 - (b) 직업용의 벨트[예: 창청소부용과 전기기술자용의 것]나 의상에 사용하지 않는 로제트(rosette)(**제6307호**)
 - (c) 새의 깃털의 트리밍(trimmings)(**제6701호**)
 - (d) **제6702호**의 인조의 꽃과 잎과 과실의 트리밍(trimmings)
 - (e) 프레스 파스너(press-fastener)의 스트립(strip), 훅(hook)이나 아이(eye)가 붙은 테이프(경우에 따라 **제5806호**
·제8308호·제9606호)
 - (f)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넘마

주:

-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
 - 제1절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
 -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 제6309호에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
 - 의류·의류부속품과 이들의 부분품
 -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류
 -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 실내용품[제5701호부터 제5705호까지에 해당하는 양탄자와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tapestry)는 제외한다]
 - 신발류와 모자류(어떠한 재질이더라도 가능하며, 석면제품은 제외한다)
- ※ 위에 열거된 물품이 이 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 벌크·가마니·부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소호주:

- 소호 제6304.20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로 만든 것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클로르페나피르(ISO)·델타메트린(INN, ISO)·람다-사이할로트린(ISO)·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제품이 포함된다.

총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 I 절)에는 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II 참조).

제1절에서는 제5804호나 제5810호의 튜(tulle)이나 그 밖의 망직물, 레이스나 자수천[튜(tulle)나 그 밖의 망직물로부터 직접 성형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 레이스나 자수직물을 포함한다.

제1절의 제품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1부
제63류

그러나 방직용 섬유이외의 그 밖의 재료가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으로 구성된 제품은 경우에 따라 관련 부주나 류의 주(통칙 제1호)에 의하여 분류하거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특히 제1절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5601호**의 워딩(wadding)의 제품
 - (b) 단순히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부직포(예: 1회용 침대 시트)(**제5603호**)
 - (c) **제5608호**의 망제품
 - (d) **제5804**나 **제5810호**의 레이스나 자수천의 모티프(motif)
 - (e) **제61류**나 **제62류**의 의류·의류부속품
- (2) 제6308호(제2절)에는 직물과 실로 구성된 특정의 세트를 분류한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3) 제6309호나 제6310호(제3절)에는 해당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과 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의 것)·스크랩끈(scrap twine) 등을 분류한다.

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외의 그 밖의 물품

(제6301호 - 제6307호)

63.01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 - 전기모포

6301.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6301.3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6301.40 -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6301.9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 이 호에는 또한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

여행용 러그는 보통 술 fringe)을 갖고 있다[일반적으로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만든다]. 그러나 모포는 각 가장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통 꿰매거나 접착제로 붙여 있다.

이 호에는 위사(緯絲)가 빠져 있음으로써 표시한 구분선을 따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완제품의 여행용 모포나 러그의 특성을 갖는 독립한 물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단상태의 직물류도 포함한다.

또한 전열식의 모포(electrically heated blanket)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동물을 덮기 위해 만든 특수 모양의 모포(제4201호)

(b) 침대이불과 장식용 탁상포(제6304호)

(c) 제9404호의 누비로 된 침대커버와 충전된 침대커버

63.02 - 베드린넨(bed linen) · 테이블린넨(table linen) ·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주방린넨(kitchen linen)

- 6302.1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 6302.21 -- 면으로 만든 것
- 6302.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6302.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 6302.31 -- 면으로 만든 것
- 6302.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630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6302.4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 6302.51 -- 면으로 만든 것
- 6302.5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6302.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6302.6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 6302.91 -- 면으로 만든 것
- 6302.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63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 또한 대마·라미(ramie)·인조섬유로 만든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종류의 것들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 (1) **베드린넨(bed linen)** : 예를 들면, 침대시트·베갯잇·덧베갯잇·솜이불잇·매트리스 커버
- (2) **테이블린넨(table linen)** : 예를 들면, 테이블보·테이블매트·러너(runners)·쟁반보·테이블센터·냅킨·차냅킨·냅킨용 주머니(sachets)·도일리스(doilies)·컵 받침(drip mat) 등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특정의 제품(예: 레이스·벨벳·브로케이드한 재료로 제조한 테이블센터)은 테이블린넨(table linen)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통 제6304호에 분류한다.

- (3)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예를 들면, 손이나 얼굴에 사용하는 타월(물러 타월을 포함한다)·목욕용 타월·해수욕용 타월·얼굴용 포와 화장용 장갑

- (4) **주방린넨(kitchen linen)** : 차타월 · 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것.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칠고 두꺼운 재료로 만든 마루포 · 접시포 · 세정포 ·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는 주방린넨(kitchen linen)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외한다(제6307호)**.

위 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위사(緯絲)가 빠져 있으므로 표시한 구분선을 따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술(fringe)이 달린 독립한 물품(예: 타월)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단상태의 직물류도 포함한다.

63.03 -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 ·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303.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6303.91 -- 면으로 만든 것

6303.9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303.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 : 예를 들면, 창 안에서 사용하는 것, 구석진 곳(recess)이나 극장의 무대 등을 닫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커튼(curtain)”에는 무게가 가벼우면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제품과 중후한 직물류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 (2) 실내용 블라인드(interior blind) : 보통 불투명하며 다양한 롤러로 된 것(예: 철도용의 것)
- (3) 커튼 밸런스(curtain valance)(또는 pelmet) : 직물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것으로서 커튼의 최상부를 감추기 위하여 창 위에 장치하도록 디자인 한 것과 침대용 밸런스(valance)(은닉과 장식용으로 침대에 부착한 것)

제직 후에 가공된 기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적합한 물품으로 전환하는 것(예: 한쪽 끝은 장식물을 부착한 기다란 직물로서 다른 한쪽 끝만을 절단하여 감침으로써 커튼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호에는 옥외용 차양(sunblind)은 **포함하지 않는다(제6306호)**.

63.04 -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침대덮개

6304.1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4.19 -- 기타

6304.20 -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6304.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4.92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304.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304.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모기장;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맨틀피스런너(mantlepiece runner); 커튼 고리;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램프 갓(lamp shade)은 **포함하지 않는다(제9405호)**.

63.05 - 포장용 빈 포대(+)

6305.10 -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韃皮)섬유로 만든 것

6305.20 - 면으로 만든 것

-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5.32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305.33 --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05.39 -- 기타

63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수송·저장·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포대(sack·bag)를 분류한다.

이 제품들은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것이 있는데, 특히 신축성이 있는 중간 벌크 컨테이너, 석탄·곡물·밀가루·감자·커피·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자루, 우편 백(mail bag)과 상품의 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사용하는 조그마한 백(bag)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봉지(tea sachet)와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부대(bale) 포장으로 사용한 후에 회수한 포장용 포(packing cloth)로서 가장자리는 거칠고 험겍게 꿰매어져 있으나 포대(sack·bag)용(완성이나 미완성의 것)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307호)**.



[소호해설]

소호 제6305.32호

신축성이 있는 중간 벌크 컨테이너는 대개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이나 폴리에틸렌(polyethylene)직물로 만들며 일반적으로 중량이 250kg으로부터 3,000kg까지의 수용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컨테이너는 상단 네 개의 코너에 리프팅 스트랩(lifting strap)을 가지고 있으며 윗부분과 밑 부분에 적재와 하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오프닝을 갖추고 있다. 이들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건조물과 유동물질을 포장·저장·운송·핸들링 하는데 사용한다.

63.06 - 방수포(tarpaulin) · 천막 · 차양,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돛[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용 · 랜드크라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 방수포(tarpaulin) · 천막 · 차양

6306.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306.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6306.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306.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6.30 - 돛

6306.4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6306.90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강력하고 조밀하게 제작된 캔버스(close-woven canvas)로서 만든 방직용 섬유직물의 제품을 분류한다.

(1) **방수포(tarpaulin)** : 이것은 노천이나 선박 · 화물차량 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 섬유의 직물[도포(塗布)하였거나 도포(塗布)하지 않은 것]이나 중후한 캔버스(대마 · 황마 · 아마 · 면)로 만들어져 있다. 캔버스로 만든 방수포(tarpaulin)는 보통 타르나 화학적인 처리로써 방수나 방부 가공을 한다. 방수포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시트(sheet) 모양이며 가장자리를 감쳤으며 아일릿(eyelet) · 끈(cord) · 스트랩(strap) 등을 부착할 수도 있다. 방수포는 특수한 형태(예: 건초 더미 · 소형 선박의 갑판 · 화물차량 등의 덮개)로 되었다 할지라도 평판 모양이면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방수포(tarpaulin)는 자동차 · 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수포 재료로 제조한 이들 물품 모양의 루스 커버(loose cover)나 방수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가벼운 재료로 된 평판 모양의 보호용 시트(sheet)와 혼동하면 안 된다(제6307호).

(2) **돛(sail)(요트용 어선이나 그 밖의 선박용)** : 이들은 강력한 방직용 섬유재료(예: 인조섬유의 강력사)를 특정의 모양으로 절단하여 그 가장자리를 감쳤으며 보통 끈 꿰는 구멍을 만들었거나 그 밖의 파스닝 디바이스(fastening device)를 부착한다.

(3) **천막(awning) · 차양(sunblind)(상점이나 카페 등에 사용하는 것)** : 이것은 태양 광선을 막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강력한 평직물이나 줄쳐진 캔버스지로 만든다. 이것은 롤러나 접을 수 있는 기구에 감겨져 있다. 이들은 때로는 차양의 경우와 같이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4) **텐트(tent)** : 이것은 가벼운 것으로부터 상당히 중후한 인조섬유·면·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거나[도포(塗布)·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캔버스로 만든 쉘터이다. 텐트는 보통 단일이나 이중으로 된 지붕이 있으며 측면이나 벽면(단일이거나 이중의 것)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울타리를 형성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를 가진 텐트, 예를 들면, 군용·야영[백팩 텐트(backpack tent)를 포함한다]·서커스·해수욕장 등의 텐트를 포함한다. 이들은 텐트용 기둥이나 텐트용 말뚝·로프 받침 그 밖의 부속품을 완전히 갖추어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구조상 텐트와 유사한 캐러밴(caravan) “천막(awning)”[때로는 캐러밴 부속물(caravan annex)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도 텐트로 간주하는데 대개 인조섬유의 직물이나 상당히 두꺼운 캔버스로 만든다. 이들은 세 개의 벽과 한 개의 지붕으로 구성하며 캐러밴의 주거 공간을 늘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임시 캐노피(temporary canopy)는 일반적으로 실외에서 사용하며, 하나 이상의 측면이 열려 있다(그러나 완전히 닫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전체나 부분을 덮는 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기상 요소(예: 태양·비·바람)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임시 캐노피의 뼈대(frame)는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구성되며 끼워넣을 수 있는 축(telescoping shaft)을 포함할 수도 있다. 지붕과 모든 측면 부분은 뼈대를 조립한 후 개별적으로 설치하거나 “팝업(pop-up)” 구조로 뼈대와 함께 포함될 수도 있다. 임시 캐노피에는 그라운드 앵커(ground anchor)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호에는 **제6601호**의 우산형 텐트는 **제외한다**.

- (5) **캠핑용품(camping goods)** : 이 호에는 캔버스로 만든 양동이·수통(water bag)·수세용 대야; 깔자리용 시트(ground-sheet); 압축공기용 매트리스(mattress)·베개와 쿠션(**제401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먹(**제5608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배낭·룩색(rucksack)과 이와 유사한 용기(**제4202호**)
- (b) 패드를 넣은 침낭·매트리스(mattress)·베개와 쿠션(**제9404호**)
- (c) 어린이용 실내·실외 놀이텐트(**제9503호**)

63.07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 마루뒹이포 · 접시뒹이포 ·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6307.20 - 구명재킷 및 구명벨트

6307.90 - 기타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 (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마루뒹이포 · 접시뒹이포 · 먼지털이포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나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 (2) 구명재킷(life-jacket) 및 구명벨트(life-belt)
- (3)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 이는 보통 딱딱한 캔버스로 만들며 ; 이것은 때때로 여러 부분을 봉합하여 의류의 형으로 하여 공급한다.
- (4) 기(flag) · 페난트류(pennant and banner)(연예용의 기 · 축제용이나 그 밖의 목적용의 기를 포함한다)
-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 · 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 · 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
- (7) 자동차 · 기계 · 슈트케이스 · 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
- (8) 평판 모양의 보호용 시트(sheet)[**제6306호**의 방수포(tarpaulin)와 그라운드시트(ground sheet)를 **제외한다**]
- (9) 커피여과용 섬유포 · 아이싱 대 등
- (10) 구두뒹이용 패드(**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 (11) 공기식 쿠션(**제6306호**의 캠핑용품을 **제외한다**)
- (12) 차(茶) 보온용 커버
- (13) 핀 쿠션(pin cushion)
- (14) 장화 · 구두 · 코르셋(corset) 등의 레이스로서 끝을 맞붙인 것 ; 그러나 방직사나 방직한 끈(cord)로 만든 레이스로서 끝을 맞붙인 것은 **제외한다(제5609호)**.

- (15)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직업용 벨트(전기기사·비행사·낙하산 사용자용의 것)]; 화물 운반용의 스트랩(strap)
(마구류의 특성을 가진 스트랩은 **제외한다-제4201호**)
- (16)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
예를 들면, 자동차 좌석 뒤에 갈고리를 단 유아용 시트는 **제외한다(제9401호)**
- (17) 우산과 양산용 커버와 케이스
- (18) 방직용 섬유류의 마운트(leaf)로 만든 부채와 핸드스크린[프레임(frame)의 재료에 상관없고, 마운트(mount)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한 것]. 그러나 귀금속 프레임을 갖춘 부채나 핸드스크린은 **제7113호**에 분류한다.
- (19) 베일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에 회수한 포장용 포로서 가장자리는 거칠고 험하게 꿰매어져 있으나 **제6305호**의 포대(sack·bag)(완성이나 미완성의 것)로 구성하지 않은 것
- (20) 직사각형으로 재단한 치즈포(cheese-cloth)로서 경사(經絲)의 끝을 풀리지 않도록 매듭한 것 (치즈포로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크기나 모양으로 재단하는 것 이상의 가공을 필요로 하는 원단상태의 치즈포는 제외한다)
- (21) 우산이나 양산과 지팡이 등에 사용하는 트리밍(trimmings); 칼의 장식끈과 이와 유사한 것
- (22)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얼굴 마스크(외과병원 등에서 수술 중에 착용하는 종류의 것)
- (23)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 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24) 로제트(예: 경기대회에서 수여하는 것)(의류용의 것을 제외한다)
- (25)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넥라인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으나 아직 까지 의류나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한 것이 아닌 방직용 섬유류의 직물 조각
- (26) 관절(예: 무릎·발목·팔꿈치·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7) 특정한 모양으로 재단하여 한 면이 접착물로 덮고 종이나 그 밖의 물질로 보호하고 가슴 모양이 나도록 가슴의 밑 부분 주위에 밀착되도록 고안한 부직포 제품

위의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문이나 창의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막이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위딩(wadding)으로 충전한 것도 포함한다]은 여기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에 열거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여러 가지 동물용의 안장과 마구류(**제4201호**)
 - (b) 여행용구[의류케이스·룩색(rucksack) 등]·쇼핑백·화장케이스 등과 이와 유사한 **제4202호**의 용기
 - (c) 인쇄물(**제49류**)
 - (d) **제5807호·제6117호·제6217호**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e) 편물로 만든 머리밴드(**제6117호**)
 - (f) **제6305호**의 빈 포대
 - (g) **제64류**에 분류하는 신발이나 신발 부분품(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신바닥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제품(각반·스패츠(spats)·레깅스 등)
 - (h) **제65류**의 모자와 부분품과 부속품
 - (ij) 우산과 양산(**제6601호**)
 - (k) 인조의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의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제6702호**)
 - (l) 공기용 카누·카약·그 밖의 선박(**제8903호**)
 - (m) 출자(**제9017호**)
 - (n) 시곗줄(**제9113호**)
 - (o) **제95류**에 해당하는 장난감·게임용구·오락용품 등
 - (p) 모프(mop)(**제9603호**)·수동식의 체(**제9604호**)·분침(**제9616호**)
 - (q)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과 탐폰(tampon)·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제2절

세트

(제6308호)

**63.08 -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 호의 세트(set)는 바느질용 · 러그(rug) 제조용 등에 사용한다.

세트에는 예를 들면, 캔버스와 같이 적어도 한 편의 직물(제작하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날염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과 실[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자수사 · 러그(rug)파일용 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세트에는 바늘과 훅(hook)과 같은 부속품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의 직물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며 예를 들면, 자수한 태피스트리(tapestry)의 제조에 사용하는 가장자리가 감쳐진 캔버스의 경우와 같이 심지어는 제품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 그러나 그 직물은 수행하여야 할 작업과 관련한 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를 들면, 가장자리가 감쳐진 테이블을 소수의 자수 디자인으로 장식하는 것과 같이 더 이상의 완성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직접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제품(article)”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세트가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서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상태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의류 제품용 직물(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들어 있는 세트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들은 그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3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제6309호 - 제6310호)

63.09 -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 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작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영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대량 적송품 형태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
* *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음의 품목표에 열거한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1)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아래의 제품 :

의류와 의류 부속품[예: 의류·숄(shawl)·스카프·스타킹과 양말·장갑·깃(collar)]·담요와 여행용 러그(rug)·가정용 린넨[예: 침대시트와 테이블린넨(table linen)]과 실내용품(예: 커튼과 테이블 커버). 또한 이 호에는 이러한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57류나 제5805호**에 열거한 실내용품[양탄자류·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를 포함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류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만든 러그(rug)와 테피스트리(tapestry)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와 포장상태에 상관없이 **제외한다**. 또한 **제94류**에 해당하는 물품과 특히 **제9404호**에 열거한 물품[매트리스 서포트, 스프링을 부착하였거나 충전물이 들어 있는 침구류, 이와 유사한 실내용품, 예를 들면, 매트리스·누비이불·솜털을 넣은 이불·쿠션·푸프(pouff)·베개]도 낮은 정도나 포장상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

(2) 석면을 **제외한** 종류의 재료(예: 가죽·고무·방직용 섬유재료·짚·플라스틱)로 만든 신발류와 모자류

사용한 흔적이 있는 그 밖의 모든 물품[예: 빈 포대(sack and bag)·방수포(tarpaulin)·텐트와 캠프용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들의 신품을 분류하는 호에 분류한다.

63.10 - 녕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 선별한 것

6310.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 (1)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녕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를 포함한다] : 녕마는 세탁이나 수선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거나 오염되었거나 파손된 실내용품, 의류, 그 밖의 낡은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되어 있거나 신품을 재단할 때 발생하는 조각(예: 양장점이나 양복점에서 나오는 잘라낸 조각)으로 되어 있다.
- (2) 사용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등의 스크랩(scrap)(예: 끈·배의 밧줄·로프·케이블 등의 제조과정 중에 생긴 스크랩의 조각 등)과 끈·배의 밧줄·로프·케이블과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낡은 것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반드시** 낡았거나 오염되었거나 찢어졌거나 작은 조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섬유(예: 가닛에 의하여 이들은 보통 재방적한다)의 재생[예: 풀링(pulling)에 의하여]·제지와 플라스틱 재료의 제조·연마재(예: 연마용 휠)의 제조나 공업용 와이퍼(예: 기계용 와이퍼)로 사용하는 데에만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제외 규정은 특히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공업 중에서 발생된 헝클어진 실이나 낡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풀어낸 실 ;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중고의 매트리스의 충전물과 쿠션·침대포 등에서 얻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 가닛스톡(garnetted stock)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물품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웨이스트나 가닛스톡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제직·염색 공정 중에서 발생된 흠을 가진 직물로서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도 **제외한다**. 이러한 직물류는 신품을 분류하는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6310.10호

제6310호의 물품은 이들이 특정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하였거나 특정의 방직용 물품(예: 동일 성질·동일 섬유 재료의 물품, 섬유의 조직이 균일한 끈, 색채가 모두 동일한 신품의 절단품)의 사용의 결과로 나온 것일 경우에는 “선별된 것(sorted)”으로 간주한다.

제 12 부

신발류 · 모자류 ·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 6 4 류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 · 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붙인 것은 제외한다](제11부)
 - 다.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 라. 석면제품(제6812호)
 - 마. 정형외과용 신발이나 그 밖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 바. 완구용 신발 · 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2. 제6406호의 부분품에는 못 · 프로텍터(protector) · 아일릿(eyelet) · 훅(hook) · 버클(buckle) · 장신구 · 끈 · 레이스 · 폼퐁(pompon)이나 그 밖의 트리밍(trimming)(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과 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류에서
 -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 나.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
4.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 · 에징(edging) · 장식품 · 버클(buckle) · 탭(tab) · 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착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 · 바(bar) · 못 · 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착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소호주:

1. 소호 제6402.12호 · 제6402.19호 · 제6403.12호 · 제6403.19호 · 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 스프리그(sprig) · 스톱(stop) · 클립 · 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 나. 스케이팅부츠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 레슬링부츠 · 복싱부츠 · 사이클화

총설

이 류에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특히 이 총설의 마지막에 있는 제외규정 참조)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 각 호에는 형태와 크기·특정용도·제조방법·구성 재료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신발류(오버슈즈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 류에서의 “신발류(foot wear)”란 알팍한 재료(예: 종이·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 등)로 된 1회용의 신발 덮개로서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는 **제외한다**. 이들 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A) 신발류의 범위는 레이스나 리본으로 간단히 조절 가능한 갑피(甲皮)가 있는 샌들(sandal)에서 타이부츠(thigh-boots)[갑피(甲皮)가 다리와 넓적다리까지 덮고 있는 것과 갑피(甲皮)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에 매는 가죽 끈 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까지 있으며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보통 실내·실외용으로 사용하는 플랫(flat)화나 하이힐화
- (2) 앵클부츠·하프부츠·니부츠(knee-boots)·타이부츠
-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
- (4) 특수 스포츠화 : 스포츠 활동용으로 디자인하고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 컨츄리 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 (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

그러나 바닥에 스케이트를 부착한 롤러 스케이팅부츠나 아이스스케이팅부츠는 **제외한다(제9506호)**.

- (5) 무용용 슬리퍼
- (6) 가정용 신발류(예: 침실용 슬리퍼)
- (7) 특히 고무나 플라스틱을 성형하거나 견고한 목재를 조각한 단일 재료로 만든 신발류
- (8) 기름·그리스·화학약품이나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그 밖의 신발류
- (9) 다른 신발위에 신는 덧신 ; 경우에 따라서는 뒷굽이 없는 경우도 있다.
- (10)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작한 바닥을 댄 신발

- (B) 이 류에 분류하는 신발류는 석면을 **제외한** 어떠한 재료[고무·가죽·플라스틱·목재·코르크·방직용 섬유(펠트(felt)와 부직포를 포함한다)·모피·조물 재료 등]로 만들어져도 가능하며, 제71류의 재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류의 범위 내에 있어서 제6401호부터 제6405호의 각 호에 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바깥바닥과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이다.

- (C)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의 각 호에서 사용하는 “바깥바닥(outer sole)”이란 신발을 신을 때 접지하는 신발의 부분품(부착된 힐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바깥바닥의 구성 재료에 대한 분류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재료에 의해 결정된다. 바깥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한 때에는 부착된 부속품이나 부분적으로 바닥을 덮고 있는 보강재를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나목 참조). 이 부속품이나 보강재에는 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얇은 직물 플로킹(flocking : 접착제로 식모하는 과정, 예를 들면,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의 박층(薄層)이나 바닥에 사용하기는 하지만 끼워 넣어진 것이 아닌 분리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바닥을 대지 않은 단일체(예: 나막신)로 된 신발의 경우에는 별개의 바깥바닥이 필요하지 않아 ; 이러한 신발은 하부 표면적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D) 이 류에서 신발의 분류에 대하여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도 고려되어야 한다. 갑피(甲皮)는 바닥 위의 신발이나 부츠 부분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성형바닥으로 된 신발이나 아메리칸 인디안의 모카신(moccasin)형 신발에서는 단일체의 재료를 사용하여 신발 바닥과 갑피(甲皮)의 전체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바깥바닥과 갑피(甲皮)의 경계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갑피(甲皮)는 발의 측면과 윗부분을 덮는 부분이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갑피(甲皮)의 크기는 발과 다리 전체를 덮는 것(넓적다리 포함, 예: 어부용 부츠)부터 단순히 가죽 끈으로 구성된 것(예: 샌들)에 이르기까지 신발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갑피(甲皮)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면 분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을 가진 구성 재료에 의해서 결정되며, 앵클패치, 보호용·장식용 스트립(strip)이나 예징, 그 밖의 장식품[예: 술(tassel)·폼퐁(pompon)·끈], 버클(buckle), 탭(tab), 아일릿 스테이(eyelet stay), 레이스, 슬라이드패스너(slide fastener) 등의 부속품이나 보강재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안감의 구성 재료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E) 이 류에서 “고무(rubber)”와 “플라스틱(plastic)”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F)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재료(textile materials)”란 앞에서 설명한 (E)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의 섬유·사·직물·펠트(felt)·부직포·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 (G) 이 류에서 “가죽(leather)”이란 제4107호와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

제12부
제64류

(H) 불완전이나 미완성 갑피(甲皮)(발목을 덮지 않는)에 바깥바닥을 부착시킨 부츠나 구두 밑 부분은 신발로 간주한다(신발의 부분품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단순히 상단의 가장자리를 보더(border)로 트리밍(trimming)하고 잠금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외의 방법으로 붙인 것을 제외한다](**제11부**)
 - (b)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신발류로서 벨크·가마니·부대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하여 제시 하는 것(**제6309호**)
 - (c) 석면으로 만든 신발류(**제6812호**)
 - (d) 정형외과용 신발류(**제9021호**)
 - (e) 완구용 신발과 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 정강이보호구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 스포츠용품(**제95류**)
-

64.01 -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 그 밖의 신발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6401.99 -- 기타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충설 (C)와 (D) 참조]가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플라스틱이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 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로 만든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 다만, 갑피(甲皮)를 이 호에서 말하는 공정으로 바깥바닥에 부착하지 않았거나 조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특히 특정 스노우부츠·고무덧신·오버슈즈·스키부츠도 포함할 수 있다.

신발의 일부분과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 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 표면층이 육안(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으로 식별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에 설명하는 공정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압축성형(press moulding)

이 공정에서 심(core)[때로는 신발의 내면을 형성하는 방직용 섬유의 “안창(sock)”으로 덮혀 있다]을 주형 안에 예비 성형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재료와 함께 넣는다.

주형을 밀폐해서 프레스판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고온에서 가열한다.

이러한 열로 인하여 예비성형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재료는 어느 정도의 점도가 생기게 되고 심(core)과 주형 벽 사이의 공간이 완전히 채워지고; 초과된 재료는 배출구를 통하여 빠져 나온다. 그때에 앞에서 설명한 재료는 가황(고무)되거나 굳는다[폴리(비닐클로라이드)].

성형공정이 마무리 될 때 신발을 주형에서 꺼내고 심을 제거한다.

(2) **사출성형(injection moulding)**

이 공정은 압축성형(press moulding) 공정에서 사용하는 예비성형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재료가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고, 주형 속에 주입하기 위해 필요한 점도를 주도록 예열을 가하는 것은 압축성형과 유사하다.

(3) **슬러쉬 성형(slush moulding)**

이 공정에서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나 폴리스티렌 페이스트를 주형 속에 주입시키고 완전히 도포(塗布)되면서 굳어지고, 초과 재료는 배출구를 통하여 흘러나온다.

(4) **회전주조(rotational casting)**

이 공정은 도포(塗布)가 밀폐된 주형 안에서 페이스트(paste)를 회전시켜 형성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슬러쉬 성형과 유사하다.

(5) **“침액성형(dip moulding)”**

이 공정에서는 가열된 주형을 페이스트(paste) 모양 속에 담그도록 한 것이다(이 공정은 제화 공업에서 드물게 사용한다).

(6) **가황처리에 의한 조립(assembly by vulcanising)**

이 공정에서는 원료(보통 고무나 열가소성 수지)를 유황 가루를 사용조제하고 압축기를 통과시켜서 평판을 만든다. 그 평판을 바깥바닥과 갑피(甲皮)[예: 뱀프(vamp), 쿼터(quarter), 토티피스(toe piece) 등]의 여러 부분품의 형태로 자른다(때로는 윤을 내기도 한다). 이 부분품들을 접착성 있게 하기 위해 살짝 가열시키고 최종적으로 신발 모형에 일치하는 형태로 조립시킨다. 조립된 신발은 그 부분품들이 서로 달라붙도록 압착시키고 그 다음에 가황시킨다. 이러한 공정으로 만든 신발은 상거래 관습상 “조립신발(built-up footwear)”이라고 부른다.

(7) **접착과 가황처리공정(bonding and vulcanising)**

이 공정은 고무로 만든 바깥바닥과 뒷굽을 **미리 조립한 갑피(甲皮)**에 하나의 공정으로 성형과 경화(硬化)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바닥은 경화과정에서 단단하게 되는 고착제로 갑피(甲皮)에 견고히 접착시킨다.

(8) **고주파의 용접(high frequency welding)**

이 공정에서는 재료를 고착제(cement)를 사용하지 않고 열과 압력을 주어 접착시킨다.

(9) **고착처리(cementing)**

이 공정에서는 미리 성형한 밑바닥이나 판에서 자른 **바깥바닥을 접착제**로 갑피(甲皮)에 고착시키고 ; **압력**을 가해서 이들이 **진조**되도록 놓아둔다. 비록 압력이 상승된 온도에서 가해졌을지라도 바닥에 사용한 재료는 바닥을 갑피(甲皮)에 고착시키기 전의 최종형태의 것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물리적 성질은 이러한 작업으로 결코 변형되지 않는다.

64.02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6402.19 -- 기타

6402.2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신발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6402.99 -- 기타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단 여러 가지로 성형된 부분품으로 구성하는 스키부츠 ;
- (b) 구두의 뒷단이 가죽(quarter)나 뒷축(counter)이 없는 나막신[갑피(甲皮)가 보통 못질하여 신발기부나 기단에 붙여서 단일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 ;
- (c) 구두의 뒷단이 가죽(quarter)이나 뒷축 가죽(counter)이 없는 슬리퍼[갑피(甲皮)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stitching)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 것] ;
-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
-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 ;
-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

64.03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6403.19 -- 기타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4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6403.59 -- 기타

- 그 밖의 신발류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6403.99 -- 기타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과 총설 (E) 참조]

(4) 가죽(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5) 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41류의 주 제3호에 의하여 “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는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한 물질에 한정한다]

64.04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컴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6404.19 -- 기타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64.05 - 그 밖의 신발류

6405.1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6405.2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405.90 - 기타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바깥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고무·플라스틱·가죽·방직용 섬유 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
- (2) 바깥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
- (3) 바깥바닥을 목재·코르크(cork)·끈·로프·판지·모피·방직용 섬유재료·펠트(felt)·부직포·리놀륨(linoleum)·라피아(raffia)·짚·수세미 등으로 만든 신발류. 이러한 신발의 갑피(甲皮)는 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

이 호에는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에 설명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신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않은 신발 부분품의 조립물[예: 안창(inner sole)에 부착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갑피(甲皮)]를 **제외한다(제6406호)**.

64.06 -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 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6406.2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6.90 - 기타

(I) 신발의 부분품[갑피(甲皮)(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신발의 여러 가지 구성 부분품 : 이들 부분품들은 석면(asbestos)을 **제외한**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신발의 부분품은 제조하고자 하는 신발의 특징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갑피(甲皮)의 부분품[예: 뱀프(vamp) · 토캡(toe-cap) · 쿼터(quarter) · 레그(leg) · 라이닝(lining) · 클록스트랩(clog strap)] : 거의 갑피(甲皮) 모양으로 자른 신발제조용 가죽 조각을 포함한다.
- (2) 보강재 : 이들은 쿼터(quarter)와 라이닝(lining) 사이거나 토캡(toecap)과 라이닝(lining) 사이에 삽입되는데 이와 같은 신발의 부분에 강인성과 견고성을 준다.
- (3) 안창 · 중창 · 바깥창[반창(half sole)이나 패틴(patin)을 포함한다] ; 안창의 표면에 아교로 부착하기 위한 안창(in-sole)
- (4) 아취 서포트(arch support)나 생크(shank)나 생크피스(shank piece)(보통 목재 · 가죽 · 섬유판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신발의 굽은 아치(arch)가 형성되도록 바닥에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
- (5) 목재 · 고무 등으로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뒷굽(아교 · 못 · 스크루식의 뒷굽을 포함한다) ; 뒷굽의 부분품[예: 톱피스(top piece)]
- (6) 스포츠 신발용 스테드 · 스파이크 등
- (7)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에 설명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않은 부분품의 조립물[예: 안창(inner-sole)에 부착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갑피(甲皮)]

- (B) 신발 안쪽에 부착하는 다음과 같은 부착물(석면을 **제외한** 어떤 재료든지 상관없다) : 즉, 갈아 낄 수 있는 안창·호스 프로텍터(hose protector)(고무나 고무가공한 직물로 만든 것 등)와 갈아 낄 수 있는 내부 힐쿠션(interior heel cushion)

(II)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들 물품은 다리의 전부나 일부를 덮도록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 발의 일부(예: 발목과 발 등)를 덮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않으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 물품들은 석면 **이외의** 여러 가지 재료[가죽·캔버스·펠트(felt)·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등]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레깅스(leggings)·스패츠(spats)·감는 각반·발 부분이 없는 “마운틴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이러한 물품 중 어떤 것은 발의 장심(arch)부분 아래에 붙이는 지지용 끝이나 탄력이 있는 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4205호**)·플라스틱(**제39류**)·고무(**제40류**)로 만든 길이 방향의 대다리(welt)
- (b) 무릎과 발목 지지물(단순히 약한 관절을 지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과 같은 것) ;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c) 유아용의 원피스 레깅스[타이즈(tights)] ; 이들 물품은 허리까지 올라오고 다리에 꼭 맞으며 때로는 발 전체를 덮는 의류이다(**제61류**나 **제62류**).
- (d) 석면으로 만든 신발 부분품과 부속품(**제6812호**)
- (e) 치수별로 만든 발의 장심받침용 특수 안창과 정형외과용의 기구류(**제9021호**)
- (f) 스포츠 활동용의 크리켓 패드(cricket pad)·경보호구·무릎받이·그 밖의 보호용 물품(**제9506호**)
- (g) 나무못(peg)·못·아일릿(eyelet)·훅(hook)·버클(buckle)·프로텍터·끈·폼퐁(pompon)·레이스(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단추·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터드(press-stud)·푸쉬버튼(push-button) (**제9606호**),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 나. 석면으로 만든 모자(제6812호)
 - 다. 제95류의 인형 모자·그 밖의 완구용 모자·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제외한다. 다만, 스트립(strip)을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포함한다.

총설

아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서는 구성 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상관없이 모체(hat-shape), 모체(hat form) 햇트 보디(hat body)와 후드(hood)·여러 가지의 모자와 그 밖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헤어네트(hair-net)(재료에 상관없다)와 모자용 특정 부착물도 분류한다.

이 류의 모자와 그 밖의 모자류는 여러 가지의 트리밍(trimmings)(재료에 상관없다)과 제71류의 재료로 만든 트리밍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동물용의 모자(제4201호)
- (b) 슴·스카프·만틸라(mantilla)·베일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6117호·제6214호)
- (c)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모자류로서 벌크·가마니·부대나 이와 유사한 벌크 포장을 한 것(제6309호)
- (d) 가발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6704호)
- (e) 석면으로 만든 모자(제6812호)
- (f) 인형용·그 밖의 완구용의 모자·카니발용품(제95류)
- (g) 모자의 트리밍(trimmings)으로 사용하나 모자에 결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물품[버클(buckle)·클라스프(clasp)·배지(badge)·새의 깃털·조화 등](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65.01 -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 [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A) 모체(hat-form) · 헤트보디(hat body) · 후드(hood)[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모피 펠트로 만든 모체(hat-form) · 헤트보디(hat body) · 후드(hood)는 보통 집토끼 · 산토끼 · 사향쥐 · 뉴트리아(nutria) · 수달피의 모피로 만들어지며 ; 울 펠트로 만든 헤트포움(hat-form) 등은 양모나 비큐나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등의 울(wool)이나 헤어(hair)로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펠트(felt)는 앞에서 설명한 재료의 혼합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인조섬유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털을 적절하게 처리를 한 후 흡취법(suction)에 의하여 원추 모양의 모자형에 판판하게 부착되게 하며, 양모의 경우에는 카드한(carded) 섬유를 이중 원추 모양의 형에 얽혀 붙인다[뒤의 경우, 가장 넓은 부분을 둘로 나누면 두 개의 원추형의 모체(hat-form)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살포한 후 만든 원추 모양의 형에서 사용하였던 본래의 원추모형을 떼어낸다. 엉성하게 펠트(felt)된 상태의 이러한 폼(form)(정상적인 국제무역상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은 완전히 펠트화시키고, 거의 원추형의 헤트보디가 되도록 경화공정과 수축공정을 거친다.

이 호에는 또한 둥근 모자 윗부분이 되도록 끝을 팽팽히 잡아당긴 헤트보디(hat body)(때로는 평행한 면을 가진 것도 있지만 보통은 경사졌고 초기 모자 형태를 가진 것도 있다)도 분류한다. 뒤의 것은 평면에 수직으로 놓았을 때 차양 부분이 모자의 윗부분에서 거의 직각상태로 돌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형한 후드(hood)와는 구별된다(제6505호 참조). 이 호의 이러한 성형하지 않은 헤트보디(hat body) · 후드(hood) 등 중 어떤 것은 가끔 하프 캐펠린(half capeline)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그러나 완전 캐펠린으로 알려진 물품은 성형가공을 한 것이며, 제6505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품목분류는 파운싱(pouncing) · 염색 · 보강처리와 같은 가공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다.

이 호에는 견고한 모자 토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쉬미즈(chemise)”나 행커치 프펠트로 알려진 아주 가볍고 얇은 후드(hood)도 포함한다.

(B)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 : 초기에는 넓은 바닥(wide-based)을 가진 원추형으로 만든 후에 직경이 약 60cm가 되도록 평편한 원반 모양으로 늘린 것. 펠트디스크(feltdisc)는 종종 조각 모양으로 절단하여 모자나 캡의 형태로 봉합한다. 군용이나 그 밖의 유니폼드레스용 캡은 펠트(felt)형으로부터 봉합한다.

(2) **펠트(felt)로 만든 망송(manchon)** : 이는 보통 털 펠트의 원추 모양 모자형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흡취법에 의하여 털을 원통 모양(높이가 40cm부터 50cm까지이고 둘레가 약 100cm 정도)으로 성형시켜 만든다. 이것은 보통 여자모자로 사용하며 원통형의 것이나 직사각형의 것으로 가느다랗게 베어낸 것을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직사각형 펠트는 조각 모양으로 절단하여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하거나 모자나 캡의 형태로 봉합한다.

65.02 -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미성형의 모체·차양을 붙이지 않은 모체·안을 대지 않은 모체·장식하지 않은 모체(hat-shape)**로서 다음과 같이 만든 것을 분류한다.

- (1) 섬유나 여러 가지 재료[특히 짚·갈대·종려섬유·라피아(raffia)·사이잘(sisal)·종이 스트립·플라스틱 스트립·나무의 스트립]의 스트립을 엮은 것. 이 재료는 섬유나 스트립의 일조를 모자의 윗부분 중심으로부터 방사 모양으로 배열하면서 이들과 결합되게 다른 섬유나 스트립을 나선 모양으로 감아서 “엮은 것(plaiting)”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엮을 수가 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엮는데 사용하는 섬유나 스트립을 더 추가해 나간다. 또는
- (2) 이 류의 주 제2호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의 재료의 스트립(strip)[예: 엮은 것이나 펠트(felt),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모노필라멘트나 플라스틱의 엮은 스트립이나 그 밖의 스트립](보통 폭이 5cm 이하)를 결합한 것, 이것은 보통 모자의 윗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봉합하거나(나선 모양의 스트립이 각각 그 앞의 것과 중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엮은 것을 나선형으로 배열하면서 그 톱니 모양의 단을 서로 맞붙여 실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호의 모체(hat-shape)는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제6501호**의 물품과는 달리 종종 윗부분과 차양 사이에 한계선이 생기며 간혹 이 두 부분의 사이가 거의 직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체(hat-shape)는 간혹 그대로 사용하며(예: 해변이나 시골용) 이 물품은 성형되지도 **않고** 차양을 붙이지도 **않은** 것이므로 안을 대지 않은 것이나 장식하지 않은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성형한 것과 구별하는데, 뒤의 경우는 보통 성형의 결과 윗부분이 타원형으로 된다(제6504호의 해설 참조).

이 호의 분류는 염색·표백·재단·조물의 돌출된 끝을 고정시키는 가공뿐만 아니라 표백·염색 등의 가공을 거친 후 단순히 제품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약간의 가공(예: round opening)한 것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호의 미성형의 모체(hat-shape)에 안을 대거나 장식을 하게 되면 **제6504호**에 분류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65.03]

65.04 -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주로 제6502호의 모체(hat-shape)로 만든 모자류를 분류하며 모자를 성형한 후 이미 만든 차양을 붙였거나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이다.

이러한 모체(hat-shape)는 보통 젤라틴·폴·고무폴 등을 칠하여 보강한 후에 주형(matrix) 위에 압축이나 다리미질을 하여 성형한다. 성형과정 중에 크라운 오픈링(crown opening)은 필요한 크기의 타원형으로 되며 동시에 차양은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진다.

성형 후 차양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든다.

성형한 모체(hat-shape)는 성형하지 않은 모체(제6502호)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뒤의 것은 간혹 장식하지 않은 그대로(해변이나 시골에서) 사용한다.

모자류는 성형과 차양 형성 후 적당한 추가 가공(예: 안을 대거나 머리띠·모자띠·모자 턱끈·조화·과실이나 잎·핀(pin)·새의 깃털과 같은 장식품의 부착)을 할 수도 있다.

위의 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 (1) 제6502호의 모체(hat-shape)로 모자상이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자류로서 성형하지 않은 것과 차양이 없는 것
- (2) 여러 가지 재료의 스트립(strip)[제6502호의 모체(hat-shape)를 나선형으로 봉합한 것으로 직접 모자로 쓸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결합하여 직접 만든 모자류
- (3) 제6502호의 모체(hat-shape)를 단순히 성형한 것이나 차양을 붙인 것과 성형하지 않고 차양이 없지만 안을 대거나 장식(리본·끈 등)한 모체

65.05 -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충충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왁스·고무·그 밖의 재료로 침투·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를 포함하나 엮은 끈(plaits이나 스트립(strip))을 봉합하거나 그 밖의 결합방법으로 만든 모체나 모자류는 **제외한다(제6504호)**. 이 호에는 또한 **제6501호**의 헤트보디(hat-body)·후드(hood)·플래도우(plateaux)[펠트디스크(felt disc)]로 만든 펠트(felt) 모자·그 밖의 펠트 헤드기어를 포함한다. 단순히 블록을 잡아 모양을 낸 후드(hood)와 테두리가 있는 후드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모자[리본·모자핀·버클(buckle)·조화(造花)·잎·과실·깃털·장식품(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으로 장식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깃털이나 조화 등으로 만든 모자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506호)**.

- (2) 베레모·보닛(bonnet)·두건·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물품은 보통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직접 만들며, 올이 충충한 경우가 많다[예: 바스크 베레모(basque beret)]
- (3) 특정한 동양풍의 모자류(예: 페즈) : 이들은 보통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들며 올이 충충한 경우가 많다.
- (4) 끝이 뾰족한 여러 가지의 모자류(제모 등)
- (5) 직업용이나 종교용의 모자류[카톨릭 주교관(mitre)·카톨릭 성직자의 사각형 모자(biretta)·각모(mortar-board) 등]
- (6) 요리사모·수녀모·간호사모·웨이트레스가 쓰는 모자 등 모자의 특성을 명백히 나타낸 것으로 직물·레이스·망직물로 만든 모자류
- (7)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씌운 코르크(cork)나 피드 헬멧(pith helmet)
- (8) 방수모자(sou'wester)
- (9) 후드(hood)

그러나 옷에 달린 상태로 제시하는 어깨망토·소매 없는 외투 등에서 분리할 수 있는 후드(hood)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그 의류와 함께 구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

- (10) 남자 정장용 체모(top hat)와 오페라용 모자

이 호에는 또한 헤어네트(hair-net)·스누드(snood)·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은 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툴(tulle)·그 밖의 망·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사랍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다.

65.06 -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 안전모자

- 기타

6506.91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06.9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나 제63류·제68류·제95류에서 분류하지 않은 모든 모자류를 분류한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군용·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에 상관없으며, 어떤 헬멧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나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자류[예: 수영모자·후드(hood)]
- (2)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모자류
- (3) 모피나 인조 모피로 만든 모자류
- (4) 새의 깃털이나 조화(造花)로 만든 모자류
- (5) 금속으로 만든 모자류

**65.07 -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모자용의 부착구만을 분류한다.

- (1) **헤드밴드(head-band)** : 이것은 크라운의 내측 가장자리에 붙이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가죽으로 만들며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 유포제나 그 밖의 도포된(塗布 : coated) 직물 등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모자에 결합할 수 있도록 된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물품에는 모자제조자의 이름 등을 새긴 경우가 많다.
- (2) **내장재와 내장재 부분품** :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이지만 때로는 플라스틱이나 가죽 등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도 보통 모자제조자의 이름 등을 나타내는 인쇄한 표시를 새긴다.
그러나 모자 등의 내측 크라운에 부착하는데 사용하는 레이블(label)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3) **커버** : 이것은 보통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 (4) **모자의 파운데이션(hat foundation)** ; 이들 물품은 보강된 직물[예: 버크럼(buckram)] · 판지 · 페이퍼 머췌이(paper maché) · 코르크(cork) · 피드(pith) · 금속 등으로 만든다.
- (5) **모자의 프레임(hat frame)** : 예를 들면, 와이어 프레임(frame)(간혹 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꼬여 있는 경우가 있다)과 오페라 모자용의 스프링 프레임(frame)
- (6) **챙(peak)(예: 제모나 그 밖의 모자용의 것)** : 주로 보안용 차양으로 만든 챙(peak)을 여러 가지 모자의 부분(크라운)에 결합하면 모자로서 분류하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
- (7) **턱끈(chinstrap)** ; 이것은 가죽 · 방직용 섬유의 직물 ·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좁은 스트립 · 밴드(얇어 만든 스트립을 포함한다)이다. 이것은 보통 조정하는데 필요한 길이로 만들어져 있으며 장식물로도 사용한다. 턱끈(chinstrap)은 모자 내에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제 6 6 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자 검용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7호)
 - 나. 장총 · 장검 · 낫을 박은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 다.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용 산류(傘類)]
2. 제6603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부분품 · 트리밍(trimming) · 부속품, 각종 재료로 만든 커버 · 솔 · 가죽끈 · 산류(傘類)의 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되, 이러한 물품들이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과 함께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66.01 -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 기타

6601.91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6601.99 -- 기타

이 호에는 완구류나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제작한 종류의 산류(傘類)(**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傘類)를 분류하며[예: “의식용”산류(傘類)·우산형 텐트·지팡이 겸용 우산·시트 겸용우산·카페용·시장용·정원용·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각각의 구성부품(부착한 부속품과 장식품을 포함한다)을 만드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그러므로 커버는 어떠한 방직용 섬유, 직물·플라스틱·종이 등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자수한 것·레이스로 장식한 것·술(fringe)·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한 것도 있다.

지팡이 겸용 우산(walking-stick umbrella)은 지팡이 모양을 나타내는 뾰뾰한 커버를 가지는 산류(傘類)이다.

우산형 텐트(umbrella tent)는 땅에 고정시킬 수 있는 “커튼 서라운드(curtain surround)”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산(傘)으로 되어 있다[예: 이것은 말뚝(peg)을 가지고 벨텐트(bell tent) 모양으로 고정시키거나 모래주머니를 “서라운드(surround)” 내측에 걸어놓아 고정시킨다].

산류(傘類)의 대(umbrella shaft : umbrella stick)는 보통 목재·케인(cane)·플라스틱·금속으로 만든다. 손잡이도 역시 대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며 전체나 일부분이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아이보리·뿔·뼈·호박·귀갑·자개 등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손잡이는 또한 가죽이나 그 밖의 재료로서 입혀지거나 술(tassel)이나 늘어뜨린 끈으로 장식하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산류(傘類)용 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산류(傘類)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산류(傘類)와 함께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으며 이것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b) 산류(傘類)나 우산형 텐트의 특성을 갖지 않은 비치 텐트(beach tent)(**제6306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6601.10호

휴대용이 아닌 부착용(예: 지면·탁자·스탠드)으로 제작한 산류(傘類)는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garden or similar umbrella)”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소호에는 야외 의자용·화가용·정원탁자용·검사자탁자용 등의 산류(傘類)와 우산형 텐트를 포함한다.

66.02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음 예외규정에서 언급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지팡이 · 케인(cane) · 채찍(whip-lead를 포함한다) ·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며 이들을 만든 구성 재료는 상관없다.

(A)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과 이와 유사한 것

일반적인 지팡이에 추가해서 이 그룹에는 또한 시트스틱(seat-stick)(펼치면 좌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것) ·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팡이 · 소년단원용의 장대 · 목동용의 크루크(crook) 등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굴곡지게 하거나 구부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미완성의 케인(cane)이나 목재지팡이도 포함하며 ; 그러나 지팡이의 제조에 적당한 케인(cane)이나 목재를 단순히 조잡한 손질이나 원형화 시킨 것은 제외한다(제1401호나 제44류). 이 호에는 또한 손잡이의 미완성 제품으로서 분명히 간주할 수 있는 블랭크(blank)도 제외한다(제6603호).

지팡이 등의 손잡이와 대(shaft : stick)의 일부분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 귀석 · 반귀석(천연 · 합성 · 재생의 것)을 결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또한 전부나 일부를 가죽이나 그 밖의 재료로 피복할 수도 있다.

(B)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보통 채찍자루와 채찍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채찍
- (2) 보통 채찍끈 대신에 짧은 가죽고리를 가진 자루로 된 승마용의 채찍

*
* *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늘어뜨린 끈이나 그 밖의 부속물(재료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착한 경우가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자검용 지팡이(measure walking-stick) · 게이징 스틱(gauging stick)과 이와 유사한 것(제9017호)
- (b) 크럿치(crutch)와 크럿치 스틱(crutch stick)(제9021호)
- (c) 장총 · 장검 · 장진한[장약(裝藥)한] 호신용 지팡이와 이와 유사한 것(제93류)
- (d) 제95류의 물품[예: 골프채 · 하키스틱 · 스키스틱 · 알파인 아이스엑스(ice-ax)]

66.03 -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 · 부속품

6603.2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6603.90 - 기타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부분품 · 장식 · 부속품과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커버 · 술(tassel) · 가죽끈 · 산류(傘類)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우산 · 양산 · 지팡이 등과 함께 제시하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 · 부착구 · 부속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 재료[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석이나 반귀석(천연 · 합성 ·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손잡이(handle)[손잡이의 미완성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와 우산 · 양산 · 지팡이 · 채찍 등에 사용하는 손잡이(knob)
- (2) 프레임(frame)[자루에 부착된 프레임을 포함한다] · 우산의 살 · 프레임용의 펴는 장치
- (3) 우산이나 양산용의 대(shaft : stick)[손잡이(handle or knob)가 결합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4) 채찍의 자루
- (5) 고리쇠(runner) · 리브팁(rib tip) · 오픈컵(open cup) · 팁컵(tip cup) · 페룰(ferrule) · 스프링 · 칼라(collar) · 산류(傘類)의 기둥에 부착되는 산의 꼭대기를 각도있게 조절하는 틸팅장치(tilting device) · 스파이크 · 시트스틱용의 그라운드 플레이트(ground plate) · 이와 유사한 것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미완성 지팡이(**제6602호** 해설 참조)

(b) 철강으로 만든 튜브,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산류(傘類)의 살(rib)이나 뼈대(stretcher)용의 철강으로 만든 형강(**제72류**나 **제73류**)

제 6 7 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濾過布)(제5911호)
 - 나. 레이스·자수천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 모양의 모티프(motif)(제11부)
 - 다. 신발류(제64류)
 - 라. 모자류나 헤어네트(hair-net)(제65류)
 - 마. 완구·운동용구·카니발용품(제95류)
 - 바.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화장용 분첩이나 털로 만든 채(제96류)
2. 제670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깃털이나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예: 제9404호의 침구)
 - 나. 깃털이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와 의류부속품
 - 다. 제6702호의 인조 꽃이나 잎,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670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유리제품(제70류)
 - 나. 도자기·돌·금속·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인조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stamping)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조립된 것

67.01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과 그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 깃촉(quill)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좀 더 특별히 열거하였거나 포함한 물품과 이 호의 **제외규정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새의 깃털과 솜털 · 새의 깃털의 부분품으로서 제품으로 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청정 · 소독이나 보전을 하기 위한 단순한 처리 **이외의** 가공을 한 것(제0505호 해설 참조) ; 이 호의 물품은 예를 들면, 표백 · 염색 · 컬(curl) · 웨이브 가공을 한 경우도 있다.
- (B)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 새의 깃털과 솜털 · 새의 깃털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새의 깃털이나 솜털 등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단지 세척만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깃대(scape) · 깃촉(quill)으로 만든 물품은 **제외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외겹 새의 깃털[예를 들면, 이것의 깃대(scape)는 여자모자의 마운트(mount)용으로 사용하도록 철사로 잡아 맺거나 묶어져 있다]과 단일의 것으로 혼합된 새의 깃털(서로 다른 깃대(scape)를 결합한 것)
 - (2) 다발 모양으로 결합된 새의 깃털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다른 기본재료에 글루로 접착하거나 고정하여 조합하여 만든 새의 깃털이나 솜털
 - (3) 모자 · 새털목도리 · 깃(collar) · 케이프(cape) · 그 밖의 의류용 물품 · 의복의 악세사리용으로 새의 부분, 새의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장식품
 - (4) 장식용의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프레임(frame)의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그러나 프레임(frame)을 귀금속으로 만든 부채는 **제7113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의류 · 의류부속품에 단순히 장식이나 충전물로서 사용하여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새의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신발(제64류)
- (b) 새의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모자(제65류)
- (c) 제6702호의 물품
- (d) 새의 깃털이나 솜털을 단지 충전물로만 사용한 침구 등의 물품(제9404호)
- (e) 제95류의 물품[예: 셔틀콕(shuttlecock) · 새의 깃털로 만든 다트(dart)나 낚시의 찌(angling float)]
- (f) 가공된 깃촉(quill)과 깃대(scape)[예: 이쑤시개(제9601호)] · 새의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제9603호) · 솜털로 만든 화장품용의 분첩(powder-puff)과 패드(pad)(제9616호)
- (g) 수집품(제9705호)

67.02 -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702.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
- (2) 인조의 꽃·잎·과실의 부분품(예: 암술·수술·씨방·꽃잎·꽃받침·나뭇잎과 잎줄기)
- (3) 인조의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예: 화환·화륜·화관·플랜트(plant)]과 인조의 꽃·잎·과실을 결합하여 만든 트리밍(trimmings)·장식용의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편이나 그 밖의 조그만 결속물로 부착한 인조의 꽃·잎·과실도 포함한다.

이 호의 제품은 주로 장식용에 사용하며(예: 가옥이나 교회에서 사용한다), 모자나 의류 등의 장식물로 사용한다.

아래에 열거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 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펠트(felt)·종이·플라스틱·고무·가죽·금속의 박·새의 깃털·패각·동물성 원료의 그 밖의 재료(예: 히드로충류나 이끼벌레류의 유연한 유체로 만들어 특별히 조제와 염색한 해상 동물성의 인조의 잎)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앞 항의 특정 사항을 **충족하는 한**, 이러한 모든 물품은 완성도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0603호**나 **제0604호**의 천연의 꽃과 잎(예: 염색한 것·은을 입힌 것·금을 입힌 것)
- (b) 의복의 장식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조화(造花)의 제조방법(즉, 여러 가지의 부분(꽃잎·수술·줄기 등)을 철사·방직용 섬유 재료·종이·고무 등으로 묶거나 글루로 접착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레이스·자수·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꽃 모양 장식(**제11부**)
- (c) 인조의 꽃이나 잎으로 만든 모자류(**제65류**)
- (d) 유리제품(**제70류**)
- (e) 도자기·석·금속·목재·그 밖의 목재로서 만든 인조의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단일체로 만든 것·상호간의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합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만든 것
- (f) 조화(造花) 등의 줄기를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방직용 섬유의 직물·종이 등을 입힌 철선(**제15부**)
- (g) 완구·카니발용품으로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물품(**제95류**)

67.03 -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이 호에는 단순히 세척·세정·길이에 따라 선별한 사람 머리카락[그러나 근단(root end)과 선단(tip end)을 각각 가지런하게 정돈하지 않은 것]과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waste) (**제0501호**)를 **제외하고** 포스티취(postiche)[예: 위그(wig)·컬(curl)·스위치(switch)의 제조용]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돈이나 그 밖의 가공[예: 슈음·표백·염색·웨이브(wave)·컬(curl)]을 한 사람 머리카락을 분류한다.

“정돈한 것(dressed)”은 모발의 분리한 필라멘트를 근단(root end)과 선단(tip end)이 가지런하도록 정돈한 모발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예: 야크(yak)·양고라·티베트 염소의 모]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예: 인조섬유)로서 가발과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인형모의 제작용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앞에서 설명한 목적으로 제조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슬리버(slover)로 된 물품(보통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평행한 두 줄의 섬유를 서로 꼬아서 만들었고 땀은 끈의 모양을 가진다) : 이러한 물품[“크레이프(crape)”라 알려져 있다]은 보통 길이가 길고 약 1kg이다.
- (2) 방직용 섬유의 슬리버(slover)를 물결 모양(waved)[곱슬곱슬(curled)하게 한 것]으로 하여 조그마한 다발로 만든 것(길이 14m~15m, 무게 약 500g)
- (3) 전체적으로 염색한 인조섬유로 된 “위사(緯絲)”[함께 묶어 술(tuft) 형태가 되도록 두 개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약 2mm의 폭으로 섬유실을 사용하여 기계로 엮어 만든 것] : 이러한 “위사(緯絲)”는 길이로 된 술 fringe) 모양을 가진다.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그 밖의 방직용 섬유(뭉치로 접속된 모양인 것·토우(tow) 모양인 것·방직준비 처리한 것)는 **제11부**에 분류한다.

67.04 - 가발 · 가수염 · 눈썹 · 속눈썹 · 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 · 동물의 털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 -- 전체가발

6704.19 -- 기타

6704.2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6704.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사람 머리카락 · 동물의 털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포스티쉬(postiche)의 제품 · 이러한 물품에는 가발 · 턱수염 · 눈썹 · 속눈썹 · 스위치(switch) · 컬(curl) · 시뇰(chignon) · 콧수염 ·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개인 화장용의 보조물 용도나 직업용(예: 연예용 가발)으로 만든 고도의 세공품이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인형용 가발(doll's wig)(제9503호)

(b) 카니발용품(보통 재료나 끝손질이 열악하다)(제9505호)

- (2) **사람 머리카락 제품**[특히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경량(輕量)의 직조물로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것]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5911호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hair filtering or straining cloth)

(b) 헤어네트(hair-net)(제6505호)

(c)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수동식의 체(hair hand sieve)(제9604호)

제 13 부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 68 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제25류의 물품
 -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 ·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예: 운모 가루나 흑연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 · 역청지와 역청 판지 · 아스팔트지와 아스팔트 판지)
 - 제56류나 제59류의 도포 ·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직물(예: 운모 가루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 역청직물 · 아스팔트직물)
 - 제71류의 물품
 -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 애자(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 치과용 버어(burr)(제9018호)
 -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 조명기구 · 조립식 건축물)
 - 제95류의 물품(예: 완구 · 게임용구 · 운동용구)
 -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 식필), 제9610호의 물품(예: 도화용 석판), 제9620호의 물품(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 제6802호의 가공한 석비용 · 건축용 석재에는 제2515호나 제2516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그 밖의 모든 자연석(예: 규석 · 부싯돌 · 백운석 · 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여러 가지의 물품
- 제25류의 주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5류에서 제외하는 물품
-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 물품

(D) 제28류의 특정 재료(예: 인조 연마재)로 제조한 물품

위의 (C)나 (D)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결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그 밖의 재료와 같은 이장물(backing)이나 지지물(support)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 일부는 응결에 의하여 만들고[예: 아스팔트제품·결합물질을 유리화함으로써 응결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과 같은 특정한 물품]; 그 밖의 것은 고압솥(autoclave)[규회벽돌(sand-lime brick)]에서 가공하여 경화(硬化)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원재료의 본래의 성상(性狀)을 변화시키는 방법[예: 슬래그 울(slag wool)·용융(鎔融: fused) 현무암 등을 제조하는 용융(鎔融)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특정의 물품도 포함한다.

*
* *

흙을 사전에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제품(즉, 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제69류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6804호의 도자제의 연마용 물품은 제외한다. 유리나 유리제품(유리 세라믹제품·석영유리제품을 포함한다)은 제70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서는 주의 예외규정에서 따로 언급한 특정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 (a) 제71류의 다이아몬드·그 밖의 귀석과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과 이들의 제품과 그 밖의 모든 제품
- (b)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 (c) 제어반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도록 천공(穿孔)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한 패널(제8538호)[예: 슬레이트(slate)·대리석·석면 시멘트로 만든 것]; 제8546호나 제8547호의 애자와 절연재료
- (d)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 (e)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 (f)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에 열거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이들의 가공품·제품 모양의 것(제9602호)
- (g) 제97류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statuary)·수집품·골동품

68.01 - 포석 · 연석 ·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슬레이트(slate) **이외의** 천연석(예: 사암 · 화강암 · 반암)을 도로 · 보도 · 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이나 경계선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분류하며 ; 이러한 물품은 다른 용도에 사용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자갈 · 조약돌과 이와 유사한 도로포장용으로 적합한 모양이 아닌 돌은 **제2517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채석장의 돌을 수공 · 기계가공에 의하여 분할 · 절단 · 조형함으로써 제조한다. 포석(sett)과 판석(flagstone)은 일반적으로 그 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나 판석은 길이와 넓이에 비하여 두께가 얇으며, 포석은 거칠은 입방체형이거나 끝을 자른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다. 연석(curbstone)은 곧은 것도 있고 구부러진 것도 있으며 ; 이들의 횡단면은 보통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비록 단순한 분할 · 절단 · 거칠게 네모형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포석 · 연석 · 판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의 돌을 포함하고 ; 이 호에는 또한 드레스된 것 · 부쉬된(bushed) 것 · 샌드드레스된(sand dressed) 것 · 연마된 것 · 모서리가 둥글게 된 것 · 모서리를 깎은 것(chamfered) · 장부(tenoned)와 장붓구멍을 만든 것(mortised) · 특수 도로용(예: 도로배수용, 차고의 출구용 등에 적합하게 만든 연석)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가공한 석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콘크리트나 인조석재의 연석(**제6810호**)과 도자제의 판석(**제69류**)을 **제외한다**.

68.02 - 가공한 석비용 · 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 (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 · 조각 · 가루

6802.10 -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장 넓은 면이 변의 길이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 가루

- 그 밖의 석비용 ·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 --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설화석고(alabaster)

6802.23 -- 화강암

6802.29 -- 그 밖의 돌

- 기타

6802.91 --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설화석고(alabaster)

6802.92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6802.93 -- 화강암

6802.99 -- 그 밖의 돌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 · 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으로서 어떤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이 해설 끝 부분에 이 류의 총설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네모로 절단,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block) · 시트(sheet) · 슬래브(slab)로 조형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석공 · 조각가 등에 의하여 다음의 모양으로 제조된 돌을 분류한다. 즉 :

(A) 대충 톱질로 절단한 블랭크(blank) ; 직사각형 이외의 시트(sheet)(한 면이나 두 면 이상의 삼각형의 것 · 육각형의 것 · 사다리꼴의 것 · 원형 등의 것)

(B) 여러 가지 모양의 돌[블록(block) · 슬래브(slab) · 시트(sheet)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모양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용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rock faced)” 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 · 부싱해머 · 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모래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깎아 사면이 된(chamfered)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

그러므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가공을 한 축조용 석[외장용 슬래브(slab)를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물품도 역시 포함한다. 층층대·코오니스(cornice)·페디먼트(pediment)·난간·초엽·지주; 문이나 창틀의 틀과 상인방돌(lintel); 문지방; 벽난로의 장식; 창용 문지방; 문의 계단; 묘석; 경계선용 석과 이정표·배 매는 기둥(bollard); 방향표시반(panoramic indicator)(에나멜칠을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보호용 주(柱)와 방호물; 하수구·통·우물반; 제분기계용 볼(ball); 화분; 기둥(column)·토대·주두(capital for column); 조상(彫像)·작은 조각상·대좌(pedestal); 높고 낮은 부조(浮彫); 십자가; 동물상; 접시·꽃병·컵; 구중약상자(cachou box); 장식 문방구 세트; 재떨이; 문진; 인조의 과실과 잎 등.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는 석(石)으로 만든 장식적인 물품은 보석이나 모조보석이나 금 세공물품이나 은 세공물품으로서 분류할 수 있으나(제71류 해설 참조), 석재의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식품은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한다.

가구(찬장·세면대·탁자 등)의 윗부분을 형성하는 슬래브(slab) 모양의 석(石)은 가구의 다른 부분과 함께 제시하고 가구의 부분품으로서 분명히 인정할 때에는 **제94류**에 분류하나(조립 여부에 상관없다), 단독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석(石)으로 제조되나, 슬레이트(slate) **이외의** 그 밖의 천연석(예: 석영·백운석·부싯돌·동석)으로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동석(steatite)은 예를 들면, 내열성이나 화학적 내식성이 필요한 공업용의 축조물에 사용한다(예: 복열로에 사용한다). 이것은 또한 제지용 펄프공장과 화학공장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의 마루나 벽 등에 사용하는 조그맣게 만든 모자이크 큐브(cubes)와 대리석과 유사한 물품 등도 분류한다(종이나 그 밖의 재료로 뒤를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리고 또한 인공적으로 착색된 대리석이나 그 밖의 천연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와 조각과 가루도 포함한다(예: 상점의 진열창에 사용하는 것).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자갈, 알갱이와 조각과 착색 천연모래는 **제25류**에 분류한다.

천연석의 조각을 시멘트나 그 밖의 결합제(예: 플라스틱)로 응결시켜 만든 슬래브(slab)·타일 등과 같은 제품과 돌의 고운 가루나 알갱이를 성형과 응결시켜 만든 작은 조각상·기둥(pillar)·컵 등은 **제6810호**의 인조석 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 제품[모자이크 큐브(cub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제6803호**·**제9609호**·**제9610호**)
- (b) 용융(鎔融 : fused)현무암의 제품(**제6815호**)
- (c) 소성(燒成)한 동석(steatite)제품(**제69류**나 **제85류**)
- (d)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 (e)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클록(clock) 케이스와 그 부분품]
- (f)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제9405호**)
- (g) 돌로 만든 단추(**제9606호**)와 **제9504호**나 **제9609호**의 백묵(chalk)
- (h)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제9703호**)

68.03 -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천연 슬레이트(natural slate)가 덩어리 모양인 것이나 분할·거칠게 절단하거나 네모지게 절단하거나 톱질에 의하여 네모지게 절단하여 블록(block) 모양·슬래브(slab) 모양·시트(sheet) 모양으로 된 것은 **제2514호**에 분류하고, 이 호에는 더 이상의 고도가공을 한 유사물품을 분류한다[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톱질한 것·절단한 것·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모서리를 깎아 사면으로 된 것·천공(穿孔)한 것·바니시(vernish) 칠한 것·에나멜 칠한 것·성형한 것·그 밖의 장식 등의 가공을 한 것].

이 호에는 특히 광택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벽용 타일·판석·슬래브(slab)(포장용·건축용·화학설비용 등에 사용하는 것 등) ; 수통(trough)·저수통(reservoir)·세면대(basin)·하수구(sink) ; 낙수흡통석(guttering stone) ; 벽난로의 장식용석과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특수한 모양(다각형·원 모양 등)뿐만 아니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지붕용, 벽단장용, 방습용으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슬레이트(slate)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응결 슬레이트(agglomerated slate)의 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인공적으로 착색하지 않은 슬레이트의 알갱이·조각·가루(**제2514호**)
- (b)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인공적으로 착색한 슬레이트의 알갱이·조각·가루(**제6802호**)
- (c) 석필(slate pencil)(**제9609호**)·필기용 슬레이트·도화용 슬레이트(사용하도록 준비된 것)과 보드(틀의 유무에 상관없다)(**제9610호**)

68.04 -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 · 버리기용 · 광택용 · 정형용 · 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 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 · 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 · 그라인딩(grinding)용 ·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 -- 합성 ·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6804.22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6804.23 -- 천연석으로 만든 것

6804.30 - 수지석(手砥石)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이것은 상당한 크기의 것으로 **파쇄용 · 분쇄용 · 펄핑용(pulping)** 등[예: 제분용(상석 · 하석) ; 목재 · 석면의 펄핑용 등 ; 제지나 페인트 믹서용의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에 사용한다.

(2) **칼붙이 · 공구 등을 버리기 위한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이것은 수공구 · 패달식의 기기 · 동력식의 기기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범주에 기재된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은 일반적으로 평판 모양 · 원통형 · 끝이 잘려진 원추형으로 되어 있다.

(3)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 헤드 · 디스크(disc) · 포인트 등** : 이것은 금속 · 석 · 유리 · 플라스틱 · 도자기 · 고무 · 가죽 · 자개 · 아이보리 등을 다듬기 · 연마 · 버리기 · 정형 · 때때로 절단을 하기 위한 기계공구 · 전동공구 · 압축공기식 수공구에 사용한다.

상당한 직경을 가지고 있는 절단용 디스크(disc)를 제외하고, 이러한 물품은 보통 앞에서 설명한 물품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이 물품은 어떠한 형태이더라도 상관없으며(예: 평판 모양 · 원추 모양 · 공 모양 · 접시 모양 · 고리 모양 · 요형 모양 · 계단 모양의 것) ; 모서리를 평판하게 밀거나 윤곽을 잡은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주로 연마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공구뿐만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자루에 극히 작은 연마헤드만을 부착시켜 만든 공구나 단단한 물질(금속 · 목재 · 플라스틱 · 코르크(cork) 등)로 된 중앙이나 심(core)에 응결된 연마 재료의 밀집층을 고착시켜 만든 공구[예: 연마 재료로 만든 테두리를 부착하고 있거나 연마 재료를 주위에 부착시킨 금속으로 만든 절단용 디스크(disc)]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혼(hone)용의 연마용품(abrasive elements)도 분류하며, 이것은 혼(hone)의 몸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지구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특정한 연마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하고 제82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82류에는 연마재료 첨가한 후에도 그것의 동일성과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절단용의 이(teeth), 홈 등을 가지고 있는 공구(즉, 이 호의 물품과는 달리 연마 재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구)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연마 재료로서 피복한 절단용 이(teeth)를 가지고 있는 톱은 **제8202호**에 분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리·석영 등의 판으로부터 디스크(disc)를 절단해 내는데 사용하는 크라운 드릴(crown drill)은 연마재료의 피복에는 상관없이 사용하는 날이 평활하면 이 호에 분류하고 이(teeth)가 있으면 **제8207호**에 분류한다[연마 재료(abrasive)를 피복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4)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갈기·벼리기·광택을 내게 하기 위하여 직접 손으로 사용하는 수지석(手砥石 : polishing stone)·숫돌(whetstone)·기름숫돌(oilstone)·혼(hone)과 이와 유사한 것**(헨들의 유무는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모양[예: 직사각형·사다리꼴·부채꼴·궁형(segment of a circle)·칼날의 모양·끝이 가늘게 된 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삼각형·원형·반원형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또한 각주형(prismatic)의 판으로서 일반적으로 응결한 탄화붕소로 되어 있으며 인조 연마제의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을 손으로 베틀거나 연마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두번째 용도로 금속공구를 베틀는데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물품은 특히 공구와 절단용 기구(예: 칼붙이·수확기계의 날·낫·큰낫·풀베는 낫 등)를 날카롭게 가는데나 금속 등을 연마하는데 사용한다.

예리한 절단용 날을 가지고 있는 공구(예: 면도칼이나 외과용 기구)는 특수한 미립자의 석이나 슬레이트(slate)로 만든 오일스톤이나 혼(hone)으로 베틀리며; 이러한 돌은 사용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물이나 기름을 적신다. 어떤 돌(예: 부석)은 화장용·매니큐어나 페디큐어용으로 사용하며 금속 등의 세척용이나 연마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라인딩 스톤(grinding 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등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응결·비응결된 천연석[예: 사암·화강암·용암·부싯돌·몰라세(molasse)·백운석·석영·조면석]·응결된 천연·인조의 연마재료[예: 금강사·부석·트리폴리(tripoli)·키절구어(kieselguhr)·분쇄된 유리·강옥(corundum)·탄화규소·석류석·다이아몬드·탄화붕소 등]·도자재료(내화점토제나 자기제)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응결된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등은 분쇄된 연마 재료나 석에다 세라믹 재료[예: 알갱이 모양의 점토나 고령토(kaolin)(때로는 장석을 혼합한다)]·규산소다·시멘트(특히 마그네시안 시멘트)·덜 단단한 결합 재료[고무·셀락(shellac)·플라스틱]와 같은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면·나일론(nylon)·아마 등과 같은 방직용 섬유는 직물이 때로는 이와 같은 혼합물과 결합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혼합물을 성형하고 건조시킨 후에 가열하거나(세라믹 결합제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유리질화 될 때까지 가열한다) 경화(고무·수지 등과 같은 결합제의 경우)시킨다. 그 후 이 제품을 필요한 크기와 형태로 다듬는다.

특정의 수지석(手砥石)[기름숫돌(oilstone)]을 제조할 때에는 세척된 가루 모양의 연마 재료를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그라인딩 스톤(grinding stone), 특히 곡물용·펼핑용의 것은 표면에 이랑 모양을 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은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세그먼트(segment)를 조립하여 만들어지며, 소켓·후프(내면이나 외면에)·밸런싱웨이트(balancing weight)·캐비티(cavity)를 부착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이들 제품은 축이나 굴대에 부착한 것도 있으나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갖추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프레임워크를 갖춘 그라인딩 스톤(grinding stone)으로서 손이나 발판으로 작동하는 것은 **제8205호**에 분류하고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은 **제84류나 제85류**에 분류한다.

위의 완전한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블랭크(blank)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분류하며 ; 본질적으로 돌·응결된 연마 재료나 도자재료로 된 세그먼트와 이들 물품의 완성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3304호**의 블록(block) 모양·타블렛 모양·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조제한 향수를 넣은 부석(perfumed pumice stone)
- (b) 천연이나 인조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도포(塗布 : coated)한 것(**제6805호**)[방직용 섬유재료·종이 등이 계속해서 목재의 디스크(disc)나 스트립(strip)에 접촉됐는지에 상관없다(기계공업·기계공업 등에 사용하는 연마봉 등)]
- (c) 치과용 버어(dental burr)(**제9018호**)



[소호해설]

소호 제6804.10호

이 소호의 제품은 트리밍(trimming)·광택을 내는 것·벼리는 것·정형(trueing)·재료를 구별하여 제거하는 것과는 반대로 곡물·펠프·안료 등과 같은 미립자 크기의 재료를 축소하는데 사용하게 제작되어 있다.

제분이나 연마용의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이들 제품은 일반적으로 한 쌍으로 되어 있고 원추형의 표면(한쪽 석은 凹형이고 다른 쪽 석은 凸형이다)은 분쇄된 알갱이가 돌의 중앙을 통하여 유출되도록 중앙 쪽으로 홈이 파져 있다.

펼핑용의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수 톤의 무게에 상당한 크기를 가지며, 단일의 재료나 글루잉(glueing)에 의해 조립되는 여러 개의 블록(block)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물품은 직경 1,200mm, 두께 500mm를 초과한다.

68.05 -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805.2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805.3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호에는 분쇄된 천연·인조의 연마 재료를 글루(glue)나 플라스틱으로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가죽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도포(塗布)시킨 롤 모양이나 특정 모양으로 자른 것[시트·띠·스트립(strip)·디스크(disc)·세그먼트 등], 실 모양이나 끈 모양의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연마 재료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살포되어 있으며 결합물질로 방직용 섬유에 부착시킨 부직포로 만든 비슷한 물품도 포함한다. 사용하는 연마 재료에는 금강사가루·강옥가루·탄화규소가루·석류석가루·부석가루·부싯돌가루·석영가루·모래가루·유리의 가루 등을 포함한다. 띠 모양·디스크(disc) 모양 등은 봉합하거나, 접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드는데 ;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목재 등으로 만든 블록(block)이나 스트립 위에 연마지나 연마포를 고착시켜 만든 연마봉과 같은 공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경질(硬質) 재료의 지지물(예: 판지·목재·금속)의 위에 연마재료의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이 아닌 조밀한 응결층을 부착하여 만든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수공구는 **제외한다(제6804호)**.

이 호에는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금속·목재·코르크·유리·가죽·고무[경화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플라스틱 재료 등을 손이나 기계적으로 평활하게 하거나 크리닝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 니스칠이나 래커칠을 한 표면의 평활용·연마용으로도 사용하며 카드 크로싱(card clothing)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68.06 -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 ·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 · 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6806.20 - 박리한 질석(蛭石)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6806.90 - 기타

슬래그 울(slag wool)과 암면(rock wool)(예: 화강암 · 현무암 · 석탄석 · 백운석의 것) : 이들 구성성분 한 종 이상을 용융(鎔融 : fused)하여 얻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보통 원심 분리시켜 유출시키거나 공기 분사시켜 섬유상으로 만든 것이다.

이 호에는 또한 “세라믹 섬유”로 알려진 “규산알루미늄류”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비율로 알루미늄과 실리카를 용융(鎔融)하여(때로는 산화지르콘 · 산화제2크로뮴 · 산화붕소와 같은 산화물을 소량 첨가하기도 한다) 이 용융(鎔融)물을 취입법(吹入法 : blowing)이나 압출법(壓出法 : extruding)으로 집속된 섬유의 덩어리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 호의 광물성 울은 제7019호의 글라스 울(glass wool)과 유사한 부드러운 털 모양이나 섬유 모양의 외관을 갖고 있다. 글라스 울과는 화학적 조성(제70류의 주 제4호 참조)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글라스 울보다 섬유가 짧고 색이 희지 않은 점에서 다르다.

팽창 · 박리한 질석(蛭石)(expanded or exfoliated vermiculite) : 질석(蛭石)(제2530호)을 고온 처리하여 팽창시켜 만들며, 때로는 원형의 35배까지 팽창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열처리에 의하여 얻는 유사한 진주암(perlite) · 녹니석(綠泥石 : chlorite) · 흑요석(obsidian) 등의 팽창된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매우 가벼운 공 모양의 알갱이상태로 되어 있다. 열처리하여 활성화된 진주암은 백색의 빛나는 미소립의 층상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제3802호**에 분류한다.

팽창점토(expanded clay) : 특별히 선별된 점토를 하소하거나 다른 물질(예: 아황산페액)이 혼합된 점토를 하소(煨燒)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다포 슬래그(foamed slag)**는 용융(鎔融 : fused)된 슬래그(slag)에 소량의 물을 가해서 제조하는데, 고밀도인 알갱이 모양 슬래그와 혼동하여서는 안되는데; 고밀도의 알갱이 모양 슬래그는 물에 용융(鎔融)된 슬래그를 부어서 제조하며 이것은 **제2618호**에 분류한다.

위의 모든 재료들은 불연성(不燃性)이고 우수한 단열용 · 방음용 · 흡음용 물품이다. 이 호에는 벌크 상태의 물품도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석면의 함유량에 관한 허용한도를 조건으로 하여(아래 참조), 벌크 모양의 **단열용·방음용·흡음용의 광물성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키질구어(kieselguhr)·규조토·탄산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으며, 간혹 플라스터(plaster)·슬래그(slag)·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톱밥·대팻밥·방직용 섬유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광물성의 울(mineral wool)은 혼합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혼합물은 덩어리 모양으로 천장·지붕·벽 등의 절연용 패킹(packings) 재료로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나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제품을 포함한다[예: 블록(block)·시트(sheet)·벽돌·타일·관·원통형 셀·끈(cord)·패드 등]. 이러한 제품은 전체적으로 인공 착색·방화 물질의 침투·종이로 표면을 입힌 것이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혼합물과 제품은 특히 그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주 소량의 석면 섬유(asbestos fibre)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첨가된 석면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5% 이하이다. 이 호에는 석면 시멘트의 제품(**제6811호**)과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의 혼합물과 이들의 제품(**제6812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규조토(珪藻土 : kieselguhr)나 그 밖의 규산질 흙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도 분류한다.

경량(輕量) 콘크리트 제품[박리한 질석(蛭石)(exfoliated vermiculite)·팽창점토나 이와 유사한 것의 응결물로 만든 콘크리트를 포함한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810호)**.

불에 구워 만든 제품은 **제69류**에 분류한다.

68.07 -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 - 롤 모양인 것

6807.90 - 기타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역청물질·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석유역청·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제2713호·제2714호·제2715호 참조)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모래·슬래그(slag)·백묵·플라스터(plaster)·시멘트·활석·유황(sulphur)·석면섬유·목재섬유·톱밥·웨이스트 코르크(waste cork)·천연수지와 같은 충전물을 함유하고 있다.

사용하기 전에 다시 용융(鎔融 : fused)하여 사용하는 블록(block) 모양의 아스팔트·역청물질·피치(pitch) 등은 그것이 정제나 탈수나 다른 재료와 혼합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7류)**; 반면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특수한 제품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압착·성형하여 제조하고 지붕용·외장용·타일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판·벽돌·타일·부석 등
- (2) 루핑보드(roofing board) :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기판(substrate)[예: 판지·유리섬유의 망(web)이나 직물이·인조섬유나 황마의 직물·알루미늄박으로 만든 것]을 완전히 둘러싸거나 해당 기판의 양면을 피복한 것
- (3) 건축용 보드(building board) :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종이의 하나 이상의 층을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완전히 둘러싸아서 만든 것
- (4) 주조·성형하여 만든 관(管)과 용기

금속으로 피복·보강한 아스팔트로 만든 관(管)과 용기는 그 구성요소가 제품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금속제품이나 아스팔트 제품으로 분류한다.

아스팔트나 역청물질 등으로 도포(塗布)한 금속으로 만든 관(管)과 용기[예: 주철이나 강(鋼)]은 금속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타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단순히 도포(塗布)·침투·피복한 종이로서 포장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제4811호**)
- (b) 도포(塗布)·침투·피복(예: 역청물질·아스팔트)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6류나 제59류**)
- (c) 아스팔트가 첨가되었으나, 주로 석면시멘트(asbestos-cement)로 만든 제품(**제6811호**)
- (d) 역청물질이나 아스팔트로 단순히 도포(塗布)·침투된 유리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웹(web) 등(**제7019호**)

68.08 -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식물성 재료[식물성 섬유·목재울·우드칩·대팻밥이나 그 밖의 목재 웨이스트(waste)·톱밥·짚·갈대·골풀·크린 베지탈(*crin végétal*)]을 시멘트(염화마그네슘 시멘트를 포함한다)·플라스터(plaster)·석탄·규소소다와 같은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구조하여 만든 건축용·단열용·방음용·흡음용의 패널·보드·타일·블록(block) 등을 분류한다. 또한 이들은 광물성의 충전물(규산질토·마그네사이트·모래·석면)을 함유하고 있거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보드·패널 등은 모두가 비교적 가벼우나 단단하다. 그리고 식물성 재료를 결합재로 사용하여 만든 물품은 식물성 재료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켰기 때문에 유기결합재로 응결시킨 **제4410호**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제4411호**의 섬유판(fibreboard)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호에는 또한 응결시킨 코르크(cork)(**제4504호**)와 **제6811호**의 물품도 **제외한다**.

68.09 -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6809.19 -- 기타

6809.90 -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 재료(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예: 스투코(stucco)[플라스터를 글루용액과 혼합하여 구조한 것으로서 표면이 간혹 대리석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파이버러스 플라스터[토우(tow) 등의 조각으로 보강된 플라스터로서 일반적으로 젤라틴(gelatin)이나 글루(glue)의 용액이 혼합되는 것]·명반 플라스터(Keene's cement나 English cement로 호칭되기도 한다)·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그 주성분이 플라스터인 것(방직용 섬유·목재 섬유·톱밥·모래·석회·슬래그(slag)·인산염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들에는 염색한 것·바니시(vernish) 칠한 것·왁스칠 한 것·래커칠 한 것·청동색으로 만든 것·금색이나 은색으로 만든 것(공정이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때로는 아스팔트로 도포(塗布)한 것일 수 있으며; 보강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공장건설에 사용하는 패널·보드·시트(sheet)·타일(때로 판지로 입힌 것도 포함한다)도 포함하며; 그리고 단조물·조상(彫像)·작은 조각상·로제트(rosette)·기둥(column)·접시·꽃병·장식물·공업용 주형 등의 구조 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플라스터를 도포(塗布)한 골절용의 붕대로서 소매용인 것(제3005호)과 플라스터로 만든 골절용 부목(제9021호)
- (b) 제6806호나 제6808호의 플라스터(plaster)로 응결한 패널 등
- (c) 제9023호의 해부학 모형·결정모형·기하학 모형·모형지도·주로 전시용으로 제작한 그 밖의 모형
- (d) 마네킹 인형(tailor's dummy) 등(제9618호)
- (e)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제9703호)

68.10 - 시멘트 제품 · 콘크리트 제품 ·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타일 · 판석 · 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 건축용 블록과 벽돌

6810.19 -- 기타

- 그 밖의 제품

6810.91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공사용으로 한정한다)

6810.99 -- 기타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 · 콘크리트 · 인조석을 주형법 · 압축법 · 원심법(예: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제조한 제품을 분류하며, **제6806호 · 제6808호**(시멘트가 단순히 결합제로만 사용한 것) · **제6811호**(석면 시멘트 제품)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건축 · 토목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를 포함한다.

인조석(artificial stone)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 · 대리석 · 화강석 · 반암 · 사문암 등)의 조각 · 알갱이 · 가루를 석회 · 시멘트 · 그 밖의 결합제(예: 플라스틱)와 함께 응결시켜 제조된다. 인조석의 제품에는 “테라조(terrazzo)”, “그라니토(granito)” 등의 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슬래그 시멘트(slag cement) 제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블록(block) · 벽돌 · 타일 ; 천장 · 벽용의 그물 · 윗가지(lath)(콘크리트가 **많은** 비율로 결합한 철사구조물로 구성된 것) ; 판석 ; 빔 ; 마루용의 중공 슬래브(slab)와 그 밖의 건설용품 ; 기둥(pillar) · 주표(post) · 경계석 ; 연석 ; 관(管) ; 계단의 발판 ; 난간 ; 목욕통 · 하수구 · 화장실변기 · 수통 · 배트(vat) · 저수통 ; 우물반 ; 묘석 ; 스탠다드 · 포울 ; 철도용 받침목 ; 호버트레인용 궤도블록 ; 문 · 창 의 틀 ; 멘틀피스 · 창받이 · 문의 발판 ; 프리즈(frieze) · 코니스(cornice) ; 꽃병 · 화분 · 건축용이나 정원용의 장식품 ; 조상(彫像) · 작은 조각상 · 동물상 ; 소형장식품.

이 호에는 모래 · 석회 · 물을 혼합한 반죽 상태의 혼합물로 제조하는 벽돌 · 타일이나 그 밖의 모래석회제품도 분류하며 ; 이러한 물품은 가압성형 후에 수평식 고압솥에서 섭씨 약 140도 되는 고압의 증기처리를 수시간 행하여 제조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의 벽돌 · 타일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백색의 것, 인공착색한 것도 포함한다.

여러 가지의 크기의 석영 덩어리를 앞에서 설명한 혼합물에 추가하여 인조석 모양의 제품이 만들어진다. 절연용으로 사용하는 경량(輕量)이고 다공질(多孔質)인 모래석회제의 시트(sheet)도 가스가 방출되도록 혼합물에 금속 가루를 첨가함으로써 제조하며 ; 그러나 이러한 시트는 압축성형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솥(autoclave)에 삼입하기 전에 주조한다.

*
* *

제13부
68.10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부쉬(bushed)한 것·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바니시(vernish) 칠한 것·청동색으로 만든 것·에나멜칠한 것·모조 슬레이트 모양으로 만든 것·성형한 것·그 밖의 장식한 것·착색한 것(전체적으로)·금속 등으로 보강한 것(예: 보강·가압한 콘크리트)이나 다른 재료로 만든 부속품[예: 돌쩌귀(hinge) 등]을 부착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a) 콘크리트의 깨진 조각(제2530호)
- (b) 응결 슬레이트(agglomerated slate) 제품(제6803호)



[소호해설]

소호 제6810.91호

이 호에는 건축·토목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를 분류한다(예: 외장판·내벽·마루·천장용 섹션·기초자재·말뚝·터널부분·수문·댐용자재·갱도·돌림띠). 이 자재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보통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고 있다.

68.11 - 석면시멘트 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6811.82 --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1.89 --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주로 상호 친화성이 있는 섬유류[예: 석면 · 셀룰로오스(cellulose) · 그 밖의 식물성 섬유 · 합성중합체 · 유리섬유 · 금속섬유]와 시멘트나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접착제의 혼합물로 된 단단한 제품을 분류하며, 섬유류는 강화재로 사용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아스팔트 · 타르 등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섬유 · 시멘트 · 물로 된 혼합물의 얇은 층을 압축하여 제조하거나, 성형(가능한 한 가압 하에서) · 압축이나 압출에 의하여 제조하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만든 시트(sheet)(크기와 두께에는 상관없다)와 이러한 시트를 절단하여 만든 제품이나 고착하기 전에 압축 · 성형 · 구부려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예: 지붕용 · 외장용 · 칸막이용 시트와 타일; 가구 제조용의 시트; 창턱; 신호판 · 문자 · 숫자; 울타리용의 막대; 물결 모양의 판; 저수통 · 수통 · 세면대 · 하수구; 관(管)용의 접합부; 패키징용의 와셔와 조인트(joint); 조각을 모조한 패널; 용마루 타일 · 낙수흡통 · 창틀; 화분; 환기용이나 그 밖의 관(管) · 케이블 도관; 연돌의 갓 등].

이들 모든 제품에는 전체적으로 착색된 것 · 바니시(vernish) 칠한 것 · 인쇄한 것 · 에나멜 칠한 것 · 장식한 것 · 천공(穿孔)한 것 · 깎은 것 · 평평하게 한 것 · 평활하게 한 것 · 연마한 것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이 있으며 또한 금속 등으로 보강된 것도 있다.

68.12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6811호와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 청석면의 것

- 기타

6812.91 --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6812.99 -- 기타

이 호에는 두들겨 펴거나, 세정·선별·등급선별의 가공보다 **훨씬 더 가공한** 석면섬유[예: 카드(card)한 섬유, 염색한 섬유]를 분류한다. 이것은 어떠한 용도(예: 방직용·펠트용 등이나 여과용·절연용·포장용 등의 재료)로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조(粗)석면섬유·길이에 따라 단순히 등급이 매겨진 것·두들겨 편 것이나 세정한 석면섬유는 이 호에 **제외한다(제2524호)**.

이 호에는 또한 탄산마그네슘·셀룰로오스파이버·톱밥·부석·활석·플라스틱·규산질토·슬래그(slag)·산화알루미늄·유리섬유·코르크(cork) 등과 석면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열절연용의 포장재료·여과용 재료·성형용 석면제품의 기본재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특히 이 호에는 앞 항에서와 같이 단일·혼합된 석면의 제품을 분류하며, 때로는 천연수지·플라스틱·규산소다·아스팔트·고무 등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제품은 펠팅(felting)·방직·꼬임·편조·제직·조합·성형하여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청석면(crocidolite asbestos)에 대한 설명은 제2524호에 대한 해설 참조.

석면 종이·판지·펠트(felt)는 석면시멘트의 시트(sheet)(제6811호)를 제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석면섬유를 분해하여 펄프 모양으로 만들고 이것을 성형·압축하여 시트(sheet)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다. 보드는 플라스틱과 석면 시트(sheet)의 겹붙인 층을 접착하여 제조한다. 이들 제품은 사용한 각각의 석면섬유가 쉽게 식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6811호의 물품과는 구별된다. 이들 물품은 코일 모양·시트(sheet) 모양·플레이트(plate)나 스트립(strip)·프레임(frame)·디스크(disc)·링(ring) 등의 모양으로 절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단사나 복합사의 제조는 석면섬유를 두들겨 펴거나 카드(card)한 다음에 방직한다. 석면섬유는 신축성이 없으며, 장섬유는 방직용으로 사용하고 단섬유는 판지·펠트(felt)·종이·석면시멘트·석면 가루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의 그 밖의 석면제품에는 끈(cord)·플레이트(plate)·패드(pad) ; 피스(piece)·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직물 ; 스트립(strip)·덧개·관·도관·관(管)용의 조인트(joint) ; 용기 ; 막대(rod)·슬래브(slab)·타일 ; 포장용 조인트(joint)[제8484호의 금속과 석면으로 만든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나 개스킷(gasket)과 조인트(joint)의 세트는 **제외한다**] ; 필터 블록(filter block) ; 테이블 매트 ; 소방수용·공업용·화학·그 밖의 중업원용 등의 보호용 의류·모자나 신발 등[예: 상의·바지·앞치마·소매·장갑·병어리장갑·각반·보통 운모제의 접안경을 접착한 후드(hood)와 마스크·헬멧·갑피(甲皮)나 바닥이 석면으로 만든 장화] ; 매트리스 ; 소방수용의 보호물·소화용의 시트(sheet)·극장용의 커튼·가스의 본관 중에서 방화용으로 석면을 피복시킨 철제의 구(sphere)와 원추(cone)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제품은 금속(간혹 황동이나 아연의 선)이나 그 밖의 재료(예: 방직용 섬유나 유리섬유)로서 보강한 경우도 있으며 ; 그리스·활석·흑연·고무를 도포(塗布)하거나 니스칠한 것·청동색을 만든 것·전체를 착색한 것·연마한 것·천공(穿孔)한 것·절삭한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총설에서 제외한 것에 추가해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석면의 가루나 플레이크(flake)(제2524호)
- (b) 충전물로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도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재료와 제품(제39류)
- (c) 석면시멘트(asbestos-cement)제품(제6811호)
- (d) 석면을 기본재료로 하여 만든 마찰재료(제6813호)

68.13 -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 · 롤 · 스트립(strip) · 세그먼트 · 디스크(disc) · 와셔(washer) · 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그 밖의 광물성 재료 ·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 석면을 함유한 것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 --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6813.89 -- 기타

석면으로 만든 마찰재료(asbestos friction material)는 석면섬유 · 플라스틱 등의 혼합물을 고압 상태에서 성형하여 제조하며 ; 또한 이것은 플라스틱 · 피치(pitch) · 고무를 침투시킨 석면 직물이나 편조물 층을 압축함으로써 제조하기도 한다. 이것은 구리 · 아연 · 납선으로 보강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석면 피복시킨 금속의 선이나 면실로서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재료는 마찰 계수가 크고 단열성과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차량 · 기중기 · 준설기 · 그 밖의 기계의 라이닝브레이크슈즈 · 클러치용 디스크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그 밖의 광물성 재료(예: 흑연 · 규산질토)나 셀룰로오스파이버(cellulose fibre)를 기본재료로 하여 만든 유사한 마찰재료도 포함한다.

이 물품의 특수용도에 따라서 이 호에 분류하는 마찰재료는 시트(sheet) · 롤(roll) · 스트립(strip) · 세그먼트(segment) · 디스크(disc) · 링(ring) · 와셔(washer) · 패드(pad)나 그 밖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도 있다. 이것들은 또한 봉합하여 조합한 것도 있으며 드릴 · 그 밖의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광물성 재료나 셀룰로오스파이버(cellulose fibre)를 함유하지 않는 마찰재료[예: 코르크(cork)의 것] ; 이들은 일반적으로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장착한 브레이크라이닝(brake lining)[디스크브레이크(disc brake)용으로서 circular cavity · 천공(穿孔)한 tongue · 이와 유사한 부속품으로 갖춘 금속성판에 고정된 마찰재료를 포함한다] ; 이것들은 자동차나 기계용으로 설계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예: **제8708호**).

68.14 -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90 - 기타

이 호에는 단순히 쪼갠(rifted) 것과 다듬은(trimmed) 것보다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천연운모(예: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것)·응결(접착) 운모·펄프 모양(재생) 운모로서 이루어진 물품과 이들 재료로 제조한 운모제품을 분류한다.

채광상태인 운모의 괴(mica book)를 단순히 쪼개거나 다듬어서 만든 얇은 시트(sheet)와 스플리팅(splitting)은 **제2525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위의 시트와 스플리팅을 절단하여 만든 제품도 분류한다. 이것은 다이펀치로 만들기 때문에 모서리를 정확하게 절단한다.

천연운모(natural mica)는 그대로 시트 모양이나 스플리팅 모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천연운모는 결정이 작고, 신축성이 적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용도로는 부적당하다. 따라서 이것 대신에 천연운모의 스플리팅을 셀락·천연수지·플라스틱·아스팔트 등을 사용하여 적층하거나 평행하게 접착하여 만든 응결(제조)운모[예: 마이커나이트(micanite)·마이커폴리움(micafolium)]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응결운모(agglomerated mica)는 시트(sheet)·플레이트(plate)·스트립(strip)의 모양으로 만들며 면적이 대단히 큰 경우도 있으며; 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한 면이나 (보통은)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유리섬유직물·종이·석면으로 보강되어 있다.

운모의 얇은 시트(sheet)는 알갱이 모양·펄프 모양의 운모층을 열처리·화학적 처리·제지공업에서의 방법과 유사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재생운모).

이러한 얇은 시트(sheet)는 신축성 있는 결합재료를 사용하여 종이나 방직용 섬유 위에 접착시키거나; 여러 장의 얇은 시트(sheet)를 유기결합체에 의하여 적층하고 접착시켜서 일정한 두께의 플레이트(plate)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의 시트·스트립이나 롤 모양의 것;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디스크(disc) 등의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것; 튜브·도관 등과 같은 성형물품을 분류한다. 이들 모든 제품은 전체를 착색하고, 페인트칠하고, 드릴가공·절삭 가공(milled)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경우도 있다.

운모는 단열성이 높고 비교적 반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븐·스토브(stove)·용광로 등의 창(window) 제조용이나 깨지지 않는 램프의 “글라스(glass)”와 보호용 안경 등의 “글라스(glass)”제조에 사용한다. 그러나 운모는 그것의 우수한 절연성으로 인해 전기공업에 주로 사용한다(전동기·발전기·변압기·축전기·저항기 등의 제조). 그러나 전기기구용의 운모로 만든 절연체나 그 밖의 운모로 만든 절연부분품은 장착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8546호부터 제8548호까지**에 분류하며 운모로 만든 비전도성 콘덴서(축전기)는 **제8532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추가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가루 모양의 운모와 웨이스트(waste)(**제2525호**)
- (b) 운모가루를 도포(塗布)시킨 종이나 판지(**제4810호**나 **제4814호**) · 운모가루를 도포(塗布)한 직물(**제5907호**).
이러한 물품은 위에서 설명한 응결 운모나 재생운모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c) 팽창된 질석(蛭石)(**제6806호**)(관련 해설 참조)
- (d) 운모로 만든 보호용 안경과 이들의 접안렌즈(**제9004호**)
- (e)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모양인 운모(**제9505호**)

68.15 -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 탄소섬유의 제품 · 이탄(泥炭) 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6815.11 -- 탄소섬유

6815.12 -- 탄소섬유 직물

6815.13 --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6815.19 -- 기타

6815.20 - 이탄(泥炭)제품

- 그 밖의 제품

6815.91 -- 마그네사이트, 페리클레이스(periclase) 형태의 마그네시아 · 백운석[돌라임(dolime)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6815.99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하며 ;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제69류**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천연흑연 · 인조흑연(nuclear grade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비 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 디스크(disc) ; 베어링 ; 관(管) · 덮개 ; 가공한 벽돌 · 타일 ; 섬세한 도안이 있는 소형 물품(예: 수집용의 화폐 · 메달 · 납 제품 병정)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형
- (2)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 탄소섬유는 보통 필라멘트 모양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한다).
- (3) 이탄(泥炭)제품[예: 시트(sheet) · 실린더셸(cylinder shell) · 식물성의 화분]. 그러나 이탄(泥炭)섬유의 방직용 제품은 **제외한다(제11부)**.
- (4) 백운석(dolomite)을 타르로 응결시켜 만든 벽돌로서 **불에 굽지 않은 것**
- (5)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않은 벽돌**과 그 밖의 모양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나 크로몰마그네사이트 제품). 이러한 물품은 이들을 노(爐) 안에 넣고 첫 번째 열을 가하는 동안 구워진다. 불에 구워서 만든 유사제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902호나 제6903호)**.
- (6) 실리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통으로서 **불에 굽지 않은 것**[예: 유리의 용융(鎔融 : fused)용으로 사용하는 것]
- (7) 귀금속 검사용의 시금석(touchstone) ; 이것은 천연석[예: 리다이트석(lydite), 이는 견고하고 내산성(耐酸性) 미립자의 검은 돌이다]으로 만든 것도 있다.
- (8) 용융(鎔融 : fused) 슬래그(slag)를 결합제(binder)를 사용하지 않고 성형하여 제조한 포장용 블록(block)과 슬래브(slab). 그러나 **제6806호**의 단열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은 **제외한다**.
- (9) 석영(quartz)이나 부싯돌(flint)을 잘게 분쇄하여 응결시켜 만든 여과관
- (10) 용융(鎔融 : fused) 현무암의 블록(block) · 슬래브(slab) · 시트(sheet)나 그 밖의 제품 ; 이들 제품은 내마모성이 강하므로 파이프의 라이닝(lining)용, 벨트컨베이어용, 코크스 · 석탄 · 광석 · 자갈 · 석 등의 자동활송장치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주로 잘라서 전기용 브러시로 사용하는 인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other carbon)”로 만든 블록(block)·플레이트(plate)나 이와 유사한 반제품(semi-manufacture)(**제3801호**)(관련 해설 참조)
 - (b) 탄소질 재료(흑연·코크스 등)와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나 점토를 기본재료로 하여 도자제품과 같이 불에 구워 만든 내화제품(경우에 따라서 **제6902호**나 **제6903호**)
 - (c) 전기용에 사용하는 탄소·브러시·탄소전극과 그 밖의 부분품이나 제품(**제8545호**)
-

제 69 류

도 자 제 품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 가.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 나. 수지 경화, 수화(水和) 반응 촉진,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 성분의 제거 등을 위해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燒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 다. 도자제품은 무기성·비(非)금속성 재료를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이를 소성(燒成)하여 만든다. 원재료는 특히, 점토나 규산질의 재료(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또는 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2844호의 물품
 - 나. 제6804호의 물품
 - 다.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 라. 제8113호의 서멧(cermet)
 - 마. 제82류의 물품
 - 바. 애자(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 사. 의치(義齒)(제9021호)
 - 아.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 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 차.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카.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이나 제9614호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
 - 타.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총설

“도자제품(ceramic products)”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 원료는 특히 점토·규산질의 재료(용융 실리카를 포함한다)·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binder)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 (B) 암석[예: 동석(steatite)]을 성형 후 불에 굽는 방법

위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상관없다) 다음의 주요 제조 단계를 거친다.

(i) **페이스트(paste)[또는 보디(body)]의 조제**

어떤 경우[예: 소성(燒成)알루미나 물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그 구성 재료에 소량의 윤활제를 첨가하여 가루 모양의 상태로 직접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스트(paste)로 만든다. 이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구성 재료를 측량하여 혼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분하는 것, 체로 치는 것, 여과 압축하는 것, 반죽하는 것, 성숙시키는 것, 탈기(脫氣)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내화제품은 또한 등급화한 집합체(graded aggregate)와 고운가루(fines)를 소량의 액체 결합제[수성의 것(예: 타르·수지재료·인산·리그닌 용액)도 있다]와 혼합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ii) **성형(shaping)**

조제된 가루나 페이스트(paste)를 가능한 한 의도한 모양에 가깝게 성형한다.

이러한 성형은 압출[압출 다이(extrusion die)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압축·주조·수가공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기계가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iii) **건조(drying)** : 위에서 성형한 제품을 건조한다.

(iv) **소성(燒成 : firing)**

이 공정에서 “소성하지 않은 도자기류(green ware)”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섭씨 800°C나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화학적 변이·부분적 용융(鎔融)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수화(水和) 반응의 촉진·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섭씨 800°C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의 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v) **완성(finishing)**

완성공정은 도자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간혹 정밀한 고도의 기계 완성이 필요하다. 완성은 또한 마킹·금속을 부착시키는 것이나 침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도자제품(ceramic product)은 특별히 조제된 착색제나 유백제·범랑이나 유약·슬립(slip)·라스터(lustre)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착색(몸체 내부나 표면적으로)·장식·윤택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류의 물품은 성형 후 소성하기 때문에 소성하지 않은 물품으로 제68류에 분류하는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나 석제품과 본질적으로 구별하며, 유리화될 수 있는 혼합물이 완전히 용융(鎔融)되어 있는 제70류의 유리제품과도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 I.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 제품
- II. 제11절(제6904호부터 제6914호)의 그 밖의 도자제품(주로 보통의 도기·석기·토기·자기·도자기 등으로 구성한 것)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깨진 도기나 깨진 벽돌조각(**제2530호**)
- (b) **제2844호**의 물품
- (c) 흑연·그 밖의 탄소·금속 조직학적이거나 그 밖의 종류의 흑연으로 블록(block)·판·막대(rod)와 이와 유사한 반제품(semi-manufacture)(예: 전기용 브러시 등의 절단에 사용하는 것)(**제3801호**)(해당 해설 참조)
- (d) 압전기용 도자재료의 절단한 소자로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예: 티탄산 바륨이나 지르콘산티탄납)(**제3824호**)
- (e) **제6804호**의 물품
- (f) 유리-도자제품(**제70류**)
- (g) 비금속(非金屬)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鎔融)에 의하여 제조한 비금속(非金屬)의 불균질한 혼합물질(**제15부**)
- (h) **제8113호**의 서멧(cermet)
- (ij) 공구용의 판(plate)·막대(rod)·팁(tip)·이와 유사한 물품[서멧(cermet)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209호**)과 **제82류**의 그 밖의 물품

제 1 절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제6901호 - 제6903호)

총설

이 절에서는 점토의 함유에 상관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제6901호에서 도자제품** :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예: 키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대개는 제2512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의 식물성 생산품(예: rice boll ash)의 탄화에 의하여 만든 실리카를 성형 후 소성하여 제조된다. 이들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결합제(점토나 마그네시아와 같은 것)로 혼합되어 있으며 때로는 다른 물질(예: 석면 · 사람 머리카락 · 톱밥 · 석탄회)이 혼합된 경우도 있다.

이들 물품은 보통 대단히 가볍다. 그리고 다공질(多孔質) 구조로 만들어져 건축용이나 가스관과 연기관 등의 피복용에 사용하는 우수한 단열 재료가 된다. 이들 제품의 어떠한 것은 또한 노(爐) · 공업용 용광로 · 증기관 · 그 밖의 공업용 플랜트와 내열성은 물론 재료의 경량성(輕量性) · 저열전도도(度)가 필요한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한다. 그 밖의 것은 섭씨 1,000도 미만의 작업온도용 열절연재로 사용한다.

- (B) **내화제품(제6902호와 제6903호)** : 즉, 야금 · 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섭씨 1,500도 정도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한 제품들이다. 내화제품은 그들이 쓰이는 특수 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딘다든가, 내열성이나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든가, 열팽창계수가 낮다든가, 다공질(多孔質)이나 조직이 치밀하다든가, 다른 물질과 접촉되어 있을 때 부식되지 않는다든가, 사용할 때 기계적 강도와 내마모성이 있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6902호나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반드시 고온에 **견딜** 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설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6903호에는 소결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도가니가 포함되나 같은 원료로 만든 섬유기계용의 실 가이드(thread guide)장치는 명백히 비내화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6909호에 분류한다.

내화제품의 주요 형태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1) 보오크사이트(bauxite) · 물라이트(mullite)나 강옥(corundum)(간혹 점토와 혼합한다) · 감정석(藍晶石 : kyanite) · 점토와 혼합한 규선석(珪線石 : sillimanite) · 홍주석(andalusite)(규산알루미늄) · 소결한 알루미늄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고(高)알루미나성 내화제품
- (2) 규산알루미늄 내화제품[예: 약간의 샤모트(chamotte)나 그로그(grog)를 혼합한 내화점토를 기본재료로 제조한 것]
- (3) 규산질과 반규산질 내화제품[모래(砂) · 분쇄된 석영 · 화연석(flint) 등을 기본재료로 하고 점토나 석회를 결합제로 하여 제조한 것]

제13부
제69류/제1절

- (4) 마그네사이트[지오버타이트(giobertite)]·해수(海水) 마그네시아나 백운석(dolomite)을 기본 재료 하여 제조한 마그네사이트 내화제품 ; 크로뮴철광이나 산화크로뮴을 기본재료로 제조한 내화물 ; 크로뮴_마그네사이트 내화물
- (5) 탄화규소를 기본재료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 (6) 일반적으로 점토로서 응결시킨 산화지르코늄이나 규산질 지르코늄의 내화제품 ; 산화베릴륨·산화토륨·산화세륨 등을 기본재료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등
- (7)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재료로 하고 피치(pitch)·타르·점토로 응결시킨 내화제품 (전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의 제품은 **제8545호**에 분류한다).
- (8) 그 밖의 재료로 한 내화제품(refractory goods)(예: 질화규소·질화붕소·알루미늄 티탄산염·관련 화합물)

내화재료는 주로 용광로·코크스노(爐)·석유분류장치·유리·도자·그 밖의 공업용 노(爐)의 건설과 화학·유리·시멘트·알루미늄·그 밖의 야금공업 등에 사용하는 단지·도가니·그 밖의 장치의 제조에 사용한다.

그러나 내화나 반(半)내화(semi-refractory)라고 표현한 제품이라도 앞에 기술한 공업용의 고온에 견딜 수 없는 제품은 제6902호와 제6903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제품은 제2절의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69.01 -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호 본문에 열거된 재료로 만든 모든 물품을 분류하며 모양에는 상관없다(내화제품인지에 상관없다)[예: 벽돌 · 블록(block) · 슬래브(slab) · 패널 · 타일 · 중공벽돌 · 실린더셸(cylinder shell) · 파이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함유하지 않은 경량(輕量) 비내화벽돌[예: 부스러기벚짚 · 톱밥 · 이탄(泥炭)섬유 등을 함유한 소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소성과정 중 유기물이 타버리고 다공질(多孔質) 구조로 되어 있는 것](제6904호)
- (b) 규조토(珪藻土 : kieselguhr)와 석영(quartz)을 함유한 소지(素地)로 제조한 여과용 플레이트(plate)(제6909호)

69.02 -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2.20 - 알루미나(Al_2O_3) · 실리카(SiO_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2.90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야금공업 · 화학공업 · 도자공업 · 유리공업과 그 밖의 공업에 사용하는 노(爐 : oven) · 용광로(kiln)나 그 밖의 장치의 건설에서 사용하는 내화제품을 분류한다(그러나 **제69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러 가지 모양의 벽돌(평행육면체 · 썸기꼴 · 원통형 · 반원통형 등). 이것에는 썸기돌이나 그 밖의 특별한 모양의 벽돌[예: 탕도벽돌(runner brick)로서 한 면은 움푹하고, 다른 면은 직선인 것]로서 제16부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기계의 건설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2) 바닥용 · 벽용 · 노용 등의 내화블록과 내화타일

이 호에는 내화재료로 제조한 관(管)(tubing · piping)(반원통형의 흙통을 포함한다) · 앵글(angle) · 벤드(bend) · 이와 유사한 관(管)연결구류는 **제외한다(제6903호)**.



[소호해설]

소호 제6902.10호

이 소호에서 측정하여야 할 것은 산화마그네슘(MgO) · 산화칼슘(CaO) · 산화크로뮴(Cr_2O_3)의 함유량이다. 함유량은 보통 존재하는 원소[즉,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chromium) 등]의 함량을 측정하여 이 함유량에 상응하는 산화물의 농도를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칼슘 40%는 산화칼슘 56%와 동등하고 마그네슘 24%는 산화마그네슘 40%와 동등하다. 그래서 칼슘 40%(산화칼슘 56%와 동등하다)를 함유한 규산칼슘을 기본재료로 한 제품은 이 소호에 분류한다.

69.03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 · 도가니 · 머플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 · 큐펠(cupel) · 관(管) · 쉬드(sheath) · 막대(rod) · 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 유리(遊離)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3.20 - 알루미늄(Al_2O_3) 또는 알루미늄과 실리카(SiO_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3.90 - 기타

이 호에는 앞 호에 열거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모든 내화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제6902호**의 내화제품과는 달리 대개 영구적인 고정물이 아닌 물품[예: 레토르트(retort) · 반응통 · 도가니 · 큐펠(cupel)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물품 · 머플(muffle) · 노즐(nozzle) · 플러그(plug) · 버너분사관(burner jet)이나 이와 유사한 노용 부분품; 소성(燒成) 중 도자기의 지지물이나 격리재로 사용하는 토갑(土匣: saggar) · 스탠드 · 그 밖의 노용 물품; 쉬드(sheath) · 막대(rod); 도가니용의 스탠드; 잉곳용 몰드; 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 · 롤러 · 블랭크(blank) · 성형도구 · 항아리; 등]
- (2) 관(管)(tubing · piping)(반원통형의 홈통을 포함한다) · 앵글(angle) · 밴드(band) · 이와 유사한 관용 부속품(구조물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했는지 상관없다)

그러나 이 호에는 세겔 콘(Seeger cone)[도자(陶瓷)제의 소성시험용]는 **포함하지 않는다(제3824호** 해설 참조). 왜냐하면 이 물품은 **성형 · 소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호해설]

소호 제6903.10호

이 소호에서 "유리(遊離) 탄소"는 흑연 · 비결정성 탄소(카본블랙) · 유기 탄소(피치 · 타르나 수지)와 같은 탄소 화학종(種)에 적용된다.

제 2 절

그 밖의 도자제품 (제6904호 - 제6914호)

총설

이 절에는 제1절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의 제품과 내화제품 **이외의** 도자제품을 분류한다.

이 표의 목적상 이러한 물품들은 종류(벽돌, 타일, 위생용품 등)에 따라 분류하며 제조에 사용한 도자재료의 성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은 **제외하며**, 자기제인 경우에는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종류의 도자제인 경우에는 제6912호에 분류한다.

(I) 자기(porcelain or china)

자기(porcelain or china)는 경질 자기·연질 자기·무유(無釉 : biscuit) 자기(parian를 포함한다)·골회 자기(bone china)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도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단단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처리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인공 착색하였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공명성(共鳴性)이 있다.

경질자기(hard porcelain)는 고령토(kaolin)(또는 kaolinic clay)·석영·장석(또는 고령토질의 점토)과 때로는 탄산칼슘을 밀바탕(body)으로 하여 제조한다. 이것은 밀바탕(body)에 무색투명 유약을 도포(塗布)함과 동시에 소성되어 함께 용융(鎔融)된다.

연질자기(soft porcelain)는 알루미늄이나 성분이 적고 실리카(silica)와 용제(flux)[예: 장석(長石)]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소량의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골회자기(bone china)는 예를 들면, 골회(bone ash)의 형태로 인산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 반투명 밀바탕은 경질 자기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어 얻어진다. 유약처리는 더 낮은 온도에서 더 소성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렇게 함으로써 유약을 바르기 전의 밑그림 장식은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무유(無釉) 자기(biscuit porcelain)는 유약처리하지 않은 자기로서 그 중에서 파리언 자기[일명 카라라(Carrara) 자기로 불린다]는 장석(長石)을 많이 함유하여 섬세하고 누르스름한 특정형태이며 때때로 외관이 페로스 대리석(Paros marble)과 유사하므로 이러한 명칭을 붙였다.

(II) 그 밖의 도자제품

자기나 도자기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다공질(多孔質 : porous)의 밀바탕(body)으로 만든 도자제품은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혀(舌 : tongue)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자제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보통의 철분질과 석회질 점토(brick earth)로 제조한 자기. 이것은 투박한 빛깔의 토상 조직(earthy texture)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색깔은 일반적으로 갈색, 적색, 황색이다.

- (2) 상당한 범위의 백색이나 유색의 도자제품(earthenware, majolica, delft-ware 등) : 이 물품의 밑바탕은 다공질(多孔質 : porous)이며 제품이 비침투성의 성질을 갖도록 유약 처리 하여야 한다(예: 백색이나 유색의 금속산화물과 같은 투명·불투명한 유약으로 처리한다). 토기 등은 미세하게 체질한 점토를 물과 잘 혼합하여 제조한다. 이 제품은 보통의 점토로 만든 자기의 경우보다 고온도로 소성하여 얻은 섬세한 조직의 몸체로 되어 있으며 ; 완전히 유리질화되지 않았으므로 자기와도 다르다.
- (B) 석기(stoneware) : 이 물품은 조직이 치밀하고 철침에 의하여도 흠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지만 불투명하고 보통은 일부만이 유리화되었으므로 자기와는 다르다. 석기는 유리질화(불침투성)·반유리질화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제조용에 사용한 점토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로 인해 보통 회색이나 갈색을 나타내며, 보통 유약처리 되어 있다.
- (C) 특정의 “반자기(semi-porcelain)”나 “모조자기(imitation porcelain)” : 이 물품은 반자기(semi-porcelain)나 모조자기(imitation porcelain)로 불리워지는 특정의 것으로서 외관이 상업적 자기가 되도록 조제, 장식, 유약처리 된 것이다. 토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지 않고 자기와 같이 사실상 반투명하지 않은 이 물품은 컵의 밑바닥같이 얇은 부분에서의 약간의 반투명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물질은 파쇄면의 조직이 거칠고 투박하며 비유리질화되었으므로 자기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벗겨진 유역 밑과 파쇄면은 다공질(多孔質)이며 혀(舌)에 흡착되는 성질이 있다. 더구나 이들은 철강제 칼에 의해 쉽게 흠이 나지만 특정 연질자기도 칼자국이 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모조자기 제품은 자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절에서 가루 모양의 동석(凍石 : steatite) 등에 점토[예: 고령토(kaolin)]나, 장석(長石 : feldspar) 등을 혼합하여 조형 소성(燒成)하여 만든 특정의 물품도 포함되나 이러한 재료로 만든 많은 제품이 전기용으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제85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절에는 일정한 동석(凍石 : steatite)을 톱질하여 일정 모양으로 조형하고 소성하여 만든 물품도 분류한다.

내화물질(예: 소결된 알루미늄)로 만든 특정의 도자제품은 내화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형태가 **아니면** 제2절에 분류한다(제6909호 해설 참조).

69.04 -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 건축용 벽돌

6904.90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벽·가옥·공업용 굴뚝 등의 건설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비내화 도자제(즉, 섭씨 1,500°C 이상의 고온을 견디지 못하는 벽돌) 벽돌을 분류한다. 이러한 벽돌은 다른 목적(예: 건축용뿐만 아니라 포장용이나 교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리화된 벽돌)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벽돌(brick)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다공질(多孔質)이며(보통의 자기), 어떤 것은 다소 유리질화된 것도 있는데(석기나 기계공학용의 벽돌) 이는 기계적 강도나 내산성(예: 화학공업)을 필요로 하는 건설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보통 직사각형의 단단한 벽돌(표면이 평평하거나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
- (2) 공업용 연돌에 사용하는 곡면 벽돌(때로는 구멍을 낸 것도 있다)
- (3) 중공벽돌(hollow brick)·유공(有孔)벽돌(perforated brick); 특히 상(床)·천장 등에서 건설용의 철강제품과 조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긴 중공인 마루용 블록(block)·건설용 슬래브(slab)·지지용 타일·충진용 타일[즉, 거어더(girder) 속에 들어 있는 블록(block)의 지지용으로 설계된 도자제의 부착물]
- (4) 외장용 벽돌(facing brick)(예: 가옥이나 벽의 외장용·문이나 창 주위의 외장용에 사용하는 것·기둥머리·가장자리·띠 모양의 장식벽·그 밖의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특수 벽돌도 포함한다)

사용하기 전에 쪼개지도록 길이의 방향으로 특별히 구멍이 뚫어져 있는 소위 “복합(double)” 벽돌은 분리된 후에도 건축용 벽돌의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모든 벽돌, 특히 외장용으로 설계한 것은 연마한 것·표면이 모래장식(裝飾: sand-faced) [소성 중 표면에 용융(鎔融: fused)모래를 부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된 것·몸체의 색을 숨기기 위하여 백색이나 유색의 슬립의 얇은 층으로서 피복한 것·훈화(燻化: smoked)한 것·불에 그슬린 것·몸체에 착색한 것·표면을 착색한 것(금속산화물의 첨가·철분질 점토의 사용·탄화수소·탄소로서 감압 가열하는 방법에 의하여)·타르 처리한 것·유약처리 된 것 등이 있다. 또한 한 면이나 양면을 주형·부조(浮彫) 모양·톱니 모양으로 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톱밥·이탄(泥炭)섬유·벚짚을 짧게 끊은 것 등을 함유한 혼합물로서 만든 경량벽돌도 포함되며 위의 물질은 소성시 연소(燃燒)하여 다공질(多孔質) 구조로 남게 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규조토(珪藻土: kieselguhr) 등으로 만든 벽돌(제6901호)과 내화성 벽돌(제6902호)
- (b) 판석(flag)과 포장용·노용·벽용 타일(제6907호) 해설 참조)

69.05 -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 기와(지붕타일)

6905.90 - 기타

이 호에는 보통 도자제의 것이지만 다소간 유리질화 되었으며 벽돌과 같이 건설용·건축용에 사용하는 비내화성제품(non-refractory good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기와[지붕용·윗부분 벽(topping wall) 피복용] :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돌기가 있거나 못을 박기 위한 구멍이 있으며 또한 연결하도록 성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6907호**의 타일과는 구별한다. 이것에는 평평하거나 반원통형의 것이 있으며 처마·지붕·마룻대·추너마루·지붕의 골 등에 사용하는 특수 모양의 것도 있다.
- (2) 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연도용 블록(flue-block) 등
- (3) 건축물·벽·문 등에 사용하는 건축용 장식품[예: 코니스(cornice)와 프리즈(frieze)] ; 지붕의 낙수구 ; 석루조·장미 모양의 장식·난간·돌출부를 버티기 위한 장치·주두, 박공벽·처마·지붕마룻대와 지붕용 장식품 등
- (4) 그 밖의 건설용 도자제품(예: 환기용 창살 ; 천장의 석고 플라스터(plaster)를 처리할 때 지지물로 사용하는 클레이라스(clay-lath)로서 금속 망목(mesh)의 교점에 소성한 점토로 만든 십자 모양·관을 부착하였고 주성분을 소성 점토로 만든 것)

이러한 물품은 평면의 것·모래(砂)로 장식한 것·슬립을 피복한 것·덩어리 상태에서 착색된 것·다른 재료를 침투시킨 것·유약처리한 것·골지계한(ribbed) 것·홈과 도관이 있는 것·그 밖의 성형에 의하여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빗물배수관과 같은 관(管)·홈통·이와 유사한 물품은 건설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제외한다(제6906호)**.

69.06 - 도자제의 관(管) · 도관(導管) · 흠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연결해서 액체의 배수용이나 배분용에 사용하도록 설계한 비내화성의 관(管 : piping) 등을 분류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모양이나 부분[직관 · 곡관 · 다지관 · 직경이 고정된 관(管) · 직경이 변화되는 관(管) 등]일 수 있으며 유약처리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저온 소성처리만 하여 조잡하게 완성 가공한 다공질(多孔質) 도자제의 농업용 · 원예용의 배수관
- (2) 그 밖의 관(管), 도관(導管)과 흠통[예: 빗물의 배수관 · 하수구 관(管) · 절연용으로 설계하지 않은 전선보호관 · 흠통이나 흠 모양의 반형관(半形管 : half tube) · 벽용 배수관 등]
이러한 관(管) 등은 유약처리하지 않은 보통 도자제인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약처리나 유리질화함으로써 불침투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 화학용의 관(管)].
- (3) 연결용이나 분기용의 관(管)의 연결구류[고리(collar) · 플랜지(flange) · 엘보(elbow) · T자형의 관(管 : T-piece) · 클린 아웃 트랩(clean out trap)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관(管) 모양의 굴뚝용 부분품(예: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 연도용 블록 등)(제6905호)
- (b) 실험실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작은 관류(管類 : tube · tubing)(예: 연소(燃燒)관)로서 일반적으로 도기제의 것(제6909호)
- (c) 전기절연용의 전선관(electric conduit tubing)과 조인트(joint)와 모든 전기용 관(管) 모양 연결구류(특히 제8546호와 제8547호)

69.07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 및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21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6907.22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6907.23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6907.30 -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40 - 피니싱 세라믹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 [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판석(flag)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노(爐)용 타일(hearth tile)과 벽용 타일(wall tile)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起)나 그 밖의 모양이 필요 없으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도록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기와와 구별하며 ; 판석(flag)은 타일(tile)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 타일은 그 밖의 기하학적인 모양(육각형·팔각형 등)인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벽난로·노(爐)·마루와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한다. 판석은 특히 도로나 마루의 포장(鋪裝)용·노(爐)용 슬래브(slab)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모두 점토나 그 밖의 무기질 원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압출하거나 프레싱(pressing)하여 성형하지만, 다른 공정에 의해서 성형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성형한 후에는 건조하고 그 다음에는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기에 충분한 온도에서 굽는다. 그러나 격심한 마모를 견디어야 할 형태의 것은 유리질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석기제, 자기제나 소결된 동석제의 타일[예: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의 내장용 타일 등] 등이다.

내마모성(耐磨耗性)과 유리질화율은 타일의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수분의 흡수력에 의해 구분된다. 높은 수분흡수율은 다공성(多孔性) 구조에 해당한다. 낮은 수분흡수율은 촘촘한(유리질화한) 구조에 해당한다.

다공성 계수나 수분흡수계수(기호 E)는 건조상태의 샘플 제품(타일)을 물로 포화시킨 후에 나타나는 물의 질량 백분율로 정의된다.

수분 흡수의 수준은 ISO 규격 10545-3에 설명된 진공법(vacuum method)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수분흡수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의 방정식에 따른다 :

$$E = \{(M_f - M_i) / M_i\} \times 100$$

여기에서,

E = 백분율로 표시된 수분흡수율

M_i = 시료의 건조 질량

M_f = 시료의 포화 질량

특정의 도자제 타일은 포장(鋪裝)용으로 사용하며 벽돌과 달리 보통 입방체(cubic)나 윗부분을 제거한 피라미드 모양이다. 실제로 특정의 도자제 타일은 석체가 일반적이거나 예외적으로 도자제(예: 횡단보도용 판석)인 경우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 그러므로 건축용과 포장(鋪裝)용 모두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벽돌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904호)**.

이 호의 물품에는 전체로 착색한 것 · 대리석 무늬를 넣은 것 · 골을 판 것(ribbed) · 홈을 판 것(channelled, fluted) · 유약처리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조건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피니싱 세라믹[예: 표면작업이나 포장작업 등을 마무리짓기 위한 보조 요소로서 사용하는 경계선 테두름(bordering)용 · 캐핑(capping)용 · 걸레받이(skirting)용 · 프리즈(frieze)용 · 모서리작업(angle)용 · 구석작업용이나 그 밖의 깔기용 타일 조각] : 둥글게 한 모서리가 있는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평평하지 않거나 삼차원의 것으로서, 마무리용 조각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경계선 테두름(bordering)용 · 걸레받이(skirting)용 · 프리즈(frieze)용 · 구석 작업용 · 장식을 위한 삽입물용과 그 밖의 도자 부속물용이 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에, 이러한 조각들은 또 다른 기본 타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적정한 표면이 보통 정상적인 타일과 동일한 색조와 마무리 형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2) 사용 전 쪼개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복합타일
- (3) 테라코타 피복재 : 다양한 크기의 단위조립식 구조로서 건축산업에서(예를 들어 수직이나 수평의 금속 프로파일에 금속클립으로 주요 건축물 벽에 고정하여) 내외장식용으로 사용한다.
- (4)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 종이나 다른 것으로 뒷면을 댄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크기가 작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유약처리한 제품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테이블매트 등에 적합한 타일(제6911호나 제6912호)
- (b) 제6913호의 장식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
- (c) 특별히 스토브(stove)에 적합한 도자제 타일(제69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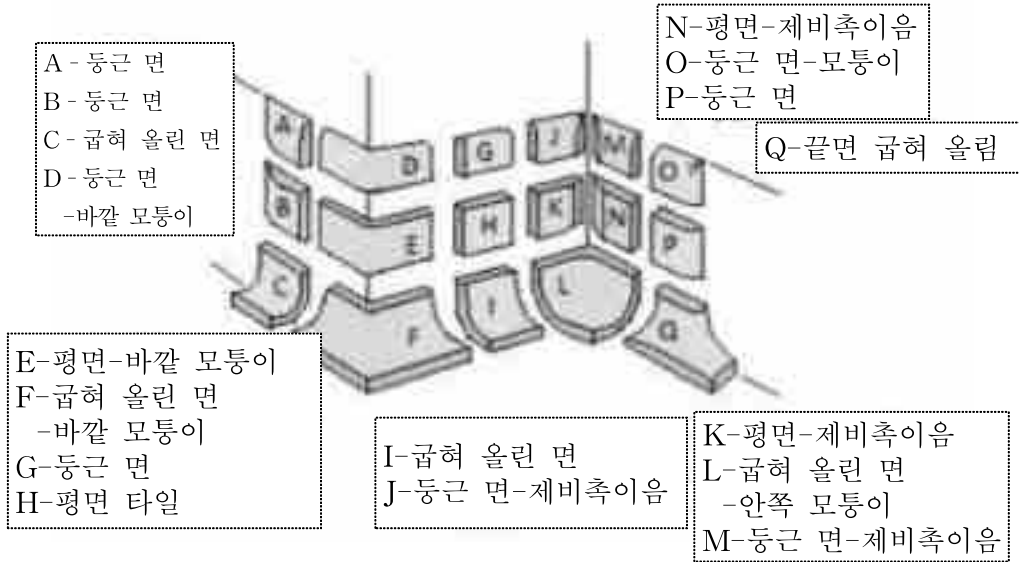
[소호해설]

소호 제6907.40호

이 소호에 분류하는 피니싱 세라믹의 몇몇 형태에 대한 그림을 아래에 제시한다.

피니싱 세라믹

분해도 - 세 줄의 트림 타일(코너비드)



피니싱 세라믹



[69.08]

69.09 -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 · 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 자기제의 것

6909.12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6909.19 -- 기타

6909.90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 · 자기(porcelain or china) · 동석(凍石 :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소결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 · 연마장치 등].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실험실용품(예: 연구용 · 공작용의 것) : 예를 들어, 도가니 · 도가니 뚜껑 · 증발접시 · 연소(燃燒)용 보트 · 큐펠(cupel) ; 막자사발과 막자 ; 산(酸)용의 스푼 · 주걱 ; 여과용이나 촉매용의 지지물 ; 여과용의 관 · 관(管) · 캔들 · 콘 · 깔때기 등 ; 워터배스(water-bath) ; 비이커 · 눈금을 매긴 용기(주방용의 것은 **제외한다**) ; 실험실용 접시 · 수은그릇 ; 작은 관류(小管類)[예: 탄소 · 유황 등의 측정용 분석관을 포함한 연소(燃燒)용 관(管)]
- (2)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 예를 들면, 펌프 · 밸브 ; 레토르트(retort) · 통 · 화학용 통 · 그 밖의 단일이나 이중벽이 있는 정전(靜電)식 용기(예: 전기도금용 · 산(酸)저장용 등의 것) ; 산(酸)용의 마개 ; 코일 · 분류용이나 증류용의 코일이나 컬럼 · 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 링(Raschig ring) ;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용의 연마 장치와 볼(balls) 등 ; 섬유기계용의 실가이드(thread guide) · 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dies) ; 공구용 플레이트(plate) · 스틱 · 팁(tip)과 이와 유사한 것
- (3) 상거래상의 수송용 ·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용기 : 예를 들면, 산(酸)이나 그 밖의 화학품의 수송에 사용하는 대형용기 · 카보이(carboy) 등 ; 식료품(잼 · 조미료 · 육 · 주류 등) · 의약품이나 화장품(포마드 · 고약 · 크림 등) · 잉크 등에 사용하는 식탁용 술병 · 항아리 · 단지 등
- (4) 농업용의 통(trough · tub)과 이와 유사한 용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6804호의 물품
- (b) 내화성 재료제의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muffle)·큐펠(cupel)·그 밖의 유사한 제품(제6903호)
- (c) 주방용이나 가정용 용기(예: 찻잔·빵그릇·비스킷 통)(제6911호나 제6912호)
- (d) 실험실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범용성이 있는 용기, 의약품·과자 등의 전사용 그릇(제6914호)
- (e) 서멧(cermet)의 제품(제8113호)
- (f) 제8533호부터 제8538호까지의 전기기기[스위치(automatic switch)·접속상자·퓨즈 등]와 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전기에자·전기절연용 연결구류 등



[소호해설]

소호 제6909.12호

이 소호에는 고강도(high-performance)의 세라믹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세라믹 매트릭스(matrix)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다[예: 알루미늄·탄화규소·지르코니아(zirconia)나 실리콘·보론(boron)·알루미늄의 질화물 또는 이들의 결합물로 조성]; 복합세라믹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강재료(예: 금속이나 흑연)의 휘스커(whisker)나 파이버(fibre)가 매트릭스(matrix)에 분산되기도 한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다공성(多孔性)이 대단히 낮고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은 매트릭스(matrix); 또한 내(耐)마멸성·내부식성·내약화성·내열충격성; 내고온강도; 강도와 중량비가 강(鋼)의 그것과 비교할 만하고 강(鋼)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 제품은 정밀 치수공차를 요구하는 기계용도에서 강(鋼)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부분품 대신 흔히 사용한다(예: 엔진 터보차저 로터·롤링 접촉 베어링과 기계 공구).

이 소호의 모스경도계(Mohs scale)는 그 경도계에 놓인 재료의 표면을 긁어낼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재료를 평가한다. 강도재료 평가는 1[활석(滑石)]에서 10(다이아몬드)까지 있으며 고강도 세라믹 재료의 대부분은 모스경도계 상층부 수치에 가까이 접근한다. 고강도 세라믹에 사용하는 탄화규소와 산화알루미늄은 모스경도계에서 9를 가리키거나 그 이상 해당한다. 보다 단단한 재료를 분류하기 위해서 가끔 모스경도계의 경도 수치가 활석(滑石) 1에서 다이아몬드 15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경도 수치를 확대한 모스경도계에서 용융(鎔融: fused) 알루미늄은 12의 경도를, 탄화규소는 13의 경도를 나타낸다.

69.10 - 도자제의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 변기통 · 수세식 변기용 물통 · 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 자기제의 것

6910.90 - 기타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설비(water system)이나 하수용의 설비(sewage system)에 연결되도록 설계한 부속물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약처리나 장시간의 소성(燒成)에 의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예: 석기제품 · 토기제품] · 내화점토 위생제품 · 모조자기제품 · 유리질의 자기제품]. 이러한 부속물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변소용이나 세면소용의 물탱크도 포함한다.

도자제의 수세식 변기용 물통은 이 호에 분류하며 기계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 호에는 욕실용이나 위생용의 작은 부속품 즉, 비누용 접시 · 스펀지 바구니 · 칫솔걸이 · 수건걸이 · 화장지걸이 등은 벽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동식 위생용품, 즉, 요강 · 소변기 · 실내용변기 등도 이 호에서 **제외하며** ; 이러한 물품은 **제6911호**나 **제6912호**에 분류한다.

69.11 - 자기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화장용품

6911.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911.90 - 기타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

69.12 -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도자(ceramic)제품**[즉, 석기·토기·모조자기인 경우(제2절 해설 참조)]은 **제6912호**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식탁용품(tableware) : 커피 잔과 찻잔·접시·수프그릇·샐러드그릇·여러 가지의 큰 접시와 쟁반·커피그릇·찻그릇·설탕그릇·술잔·물 컵·소스 그릇·과일그릇·양념그릇·식염그릇·겨자그릇·에그 컵(egg-cup), 찻그릇용대·테이블 매트·칼 놓는대·순가락·냅킨링
- (B) 주방용품(kitchenware) : 스투우 팬(stew-pan)·여러 종류의 모양과 크기의 캐서롤(casserole)·굽거나 볶는데 사용하는 접시·물동이·페이스트리나 젤리 몰드(mould)·주방용 항아리·저장용 항아리·보관용의 항아리와 저장통(차 항아리·빵 상자 등)·갈때기·국자·눈금이 있는 주방용의 용량 측정기·국수방망이
- (C) 그 밖의 가정용품 : 재떨이·온수용의 그릇·성냥통의 대
- (D) 화장용품(toilet article)(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화장세트(물통·바울 등)·위생용 페일(pail)·탕파(bed pan)·요강(urinal)·실내용 변기(chamber-pot)·타구(spittoon)·주수기 통(douche can)·눈 씻는 컵(eye bath) ; 비누용 접시·수건걸이·치솔걸이·화장지걸이·수건고리와 이와 유사한 욕실용품이나 주방용품(벽에 고정이나 부착하도록 설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포장용이나 수송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카보이(carboy)·항아리·병·단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6909호**)
- (b) 목욕통·비데·설거지통과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제6910호**)
- (c) **제6913호**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 (d)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작은 장식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도자 제품(**제71류**)
- (e) 도자재료제의 용기와 금속으로 만든 작용부분을 구비하고 있는 커피 분쇄기나 향료 분쇄기(**제8210호**)
- (f) **제8516호**의 전열장치(요리용·가열용 등)[가열용 플레이트(plate)·전열용 저항체 등의 전열체를 포함한다]
- (g) **제91류**의 물품[클록(clock) 케이스를 포함한다]
- (h) **제9613호**의 라이터와 향수용 분무기 등(**제9616호**)

69.13 -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 자기제의 것

6913.90 - 기타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사무실·집회실·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 장식품)으로 만든 도자 제품을 광범위하게 분류한다.

이 호에는 그 물품의 성질이나 완성품이 장식용에 적합할지라도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 (a) 코니스(cornice)·프리즈(frieze)와 이와 유사한 건축용 장식품(제6905호)
- (b)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아주 작은 부착물들을 많이 부착한 있는 물품(제71류)
- (c)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류)
- (d) 제90류의 기압계·온도계와 그 밖의 기구
- (e) 클록(clock)과 그 케이스[뒤의 경우에는 장식한 것이나 클록(clock) 케이스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이나 이와 유사물품으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제91류)
- (f)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g)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 (h) 제96류의 단추·흡연 파이프·탁상용 라이터·향수분무기와 그 밖의 물품
- (ij) 회화·데생과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 오리지널 조상·수집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실용적 가치가 없고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과 다른 장식물을 지지하거나 그 장식효과를 증진하는 효용만 있는 물품.** 예:

- (1) 조상(彫像)·작은 조각상·흉상·호트 릴리프(haut relief)와 배스 릴리프(bas relief)·그 밖의 내부나 외부 장식용의 상; 벽난로·선반 등의 장식물[클록 세트(clock set)의 구성부분품을 포함한다](동물·상징적이거나 우화적인 상 등); 운동이나 예술에 대하여 수여하는 트로피; 벽에 부착하는 장식품(현판·트레이·상패); 메달리온; 화열가리개; 조화·과실·잎 등; 화환과 이와 유사한 묘비용 장식품; 가정용의 진열 캐비닛이나 선반에 사용하는 작은 장식품
- (2) 십자고상·그 밖의 교회나 종교적인 장식품
- (3) 순수한 장식용의 목적인 식탁용 그릇·꽃병·단지·화분

- (B) **식탁용품과 그 밖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 실용성이 그 물품의 장식적인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부수적인 것)** : 예를 들면, 부조(浮彫)된 성형쟁반(실용성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장식접시나 재떨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전히 부수적인 쟁반이나 용기를 붙인 장식품, 본래 실용가치가 없는 소형장식품 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원래 실용목적으로 설계하지만 그 장식은 보통 실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식한 물품이 그 장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실용목적이 더 효과적이며 이러한 물품은 이 호보다는 **제6911호**나 **제6912호**에 분류한다.
- (C)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ornamenting or decorating)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흡연용구·보석함·구중(口中)약상자(cachou box)·담배상자(cigarette box)·향료그릇(perfume burner)·잉크스탠드(ink-stand)·북엔드(book-end)·문진(paperweight)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틀

69.14 -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 자기제의 것

6914.90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모든 도자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주로 도자재료(일반적으로 토기, 때로는 보통 토기 등)로 만든 스토브(stove)와 그 밖의 가열 장치 ; 비내화용의 내화벽돌로 만든 가열장치의 외측 ; 도자제의 스토브(stove)와 가열장치부분품 [스토브(stove)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한 종류의 타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기가열장치는 **제8516호**에 분류한다.
- (2) 비장식성의 화분(예: 원예용)
- (3) 문·창문 등의 부착물 등(예: 손잡이·지판 등) ; 수세식 변기의 체인용의 손잡이 등
- (4) 상점의 간판과 윈도우(window)용의 문자·숫자·신호판과 이와 유사한 모티프(motif). 인쇄한 그림이나 원문이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명용은 제외한다(**제9405호**).
- (5) 스프링이 있는 마개 등(주로 도자제품의 것)(예: 레몬수병용의 것)
- (6) 실험실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범용성이 있는 항아리와 그 밖의 용기와 의약품과 과자 등의 전시용 그릇
- (7) 그 밖의 여러 가지의 제품[예: 칼의 손잡이·스쿨 잉크웰(school inkwell)·방열기용의 급습기(humidifier)·새장용의 부착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도자로 만든 의치(義齒)(**제9021호**)
- (b)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 (c) **제96류**의 단추·흡연용 파이프와 그 밖의 물품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3207호의 물품[예: 법랑·유약·유리프리트(frit)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그 밖의 유리]
 - 나.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 다. 제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애자(제8546호),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 라.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 마.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 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제90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피하주사기·의안(義眼)·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
 - 사. 제9405호의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 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아. 제95류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기계장치를 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눈으로서 제95류의 인형이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제96류의 단추·장착된 진공 플라스크·향수용 분무기나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그 밖의 물품
2.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서랭(徐冷)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sheet)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으로,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소호주:

1. 소호 제7013.22호, 제7013.33호, 제7013.41호, 제7013.91호에서 “납 크리스탈”이란 산화납의 함유량이 최소한 전 중량의 100분의 24 이상인 유리만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각종 모양의 유리와 그 제품을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제외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유리[아래의 용융(鎔融 : fused) 석영과 그 밖의 용융(鎔融 : fused) 실리카를 제외한다]는 알칼리 규산염(규산나트륨과 규산칼슘)과 일종 이상의 규산칼슘과 규산납(부수적으로 바륨·알루미늄·망간·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경우도 있다)이 다양한 비율로 구성된 균질화된 용융(鎔融 : fused) 혼합물이다.

이들은 그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유리가 있다[예: 보헤미안유리(Bohemian glass)· 크라운 유리· 납 크리스탈유리· 플린트유리(flint glass)· 스트라스 페이스트(strass paste)]. 여러 가지의 이들 유리의 형태는 비결정질이며 완전 투명하다.

이 류의 각 호는 그 구성하는 유리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각 호에 부합하는 물품을 분류한다.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주입법(casting)**(예: 판유리 제조)
- (B) **롤법(rolling)**[예: 판유리 제조· 망입(網入 : wired) 유리제조]
- (C) **플로우트법(floating)**(플로우트(float) 유리제조)
- (D) **주조법(moulding)**[압축법· 취입법(吹入法)· 인상법(引上法)을 병용하여 제조한 것에 상관없다](예: 병 제조· 큰 컵 제조· 광학용 유리의 모양 제조· 재떨이 제조)
- (E) **취입법(吹入法 : blowing)**(기계식이나 비기계식으로 주형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병 제조· 앰플 제조· 장식품 제조· 간혹 판유리 제조)
- (F) **인상법(引上法 : drawing)이나 압출법(extruding)**[특히 판유리 제조· 막대(rod) 제조· 관(管) 제조· 유리섬유 제조]
- (G) **압축법(pressing)**[일반적으로 주형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재떨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또한 롤법(roll method)(예: 부조(浮彫)무늬로 압연한 유리의 제조)이나 취입법(吹入法)(예: 병 제조)과 병용하고 있다].
- (H) 흡입램프를 사용한 **램프가공(lamp working)**[앰플· 장식용품 등을 유리의 막대(rod)이나 관(管)으로부터 제조]
- (I)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얻은 블랭크(blank)· 구형 등을 필요한 제품으로 **절단하는 방법(cutting out)**[특히 용융(鎔融 : fused)석영이나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 제품은 고체 상태의 블랭크나 횡단면이 중공(中空)인 소재로부터 얻는다]

다포유리(multicellular glass)는 제7016호 해설을 참조한다.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나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에 한정한다.

*
* *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를 포함한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젖빛유리나 오팔유리(milk or opal glass)** : 유리 덩어리에 형석이나 골회(bone ash)와 같은 물질을(약 5% 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한 반투명의 유리이며 ; 첨가물질은 냉각이나 재가열할 때 용융(鎔融 : fused)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결정이 발생되도록 한다.
- (2) **유리자기(glass-ceramic)라고 부르는 특수 재료** : 결정의 생성을 조정함으로써 거의 전부 결정질물질로 전환시킨 유리다. 이들은 glass batch에 결정핵 성장제[산화티타늄과 산화지르코늄과 같은 금속산화물이나 구리 가루(copper powder)과 같은 금속]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이들 물품은 보통유리 제조기술에 의하여 성형한 후, 이 물품은 유리질알갱이(nucleating crystal)의 주위에 유리몸체의 유리질화(불투명화)될 수 있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한다. 유리자기(glass ceramic)는 불투명하지만 투명한 것도 있다. 이들은 보통의 유리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 · 전기적 성질 · 열저항 성질이 강하다.
- (3) **저팽창계수를 가지는 유리**(예: 붕규산염유리)

70.01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유리를 제조할 때 생기는 **모든 종류의 유리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용융(鎔融 : fused)도가니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을 회수한 유리 웨이스트(waste)도 포함한다]과 ; 유리제품의 깨진 것. 유리의 웨이스트(waste)는 일반적으로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특성을 가진다.
- (B) **유리 괴**[즉, 다소 정형(定形 : regular)의 블록(block)](“에나멜”유리를 포함한다). 특정한 용도가 없다.

“에나멜(enamel)”유리는 대부분의 보통 유리에 비하여 용융점(鎔融 : fusibility)이 더 높고 밀도(density)도 더 높다. 이것은 보통 불투명하나 때때로 투명한 때도 있으며 ; 이것은 무색이나 유색일 때도 있다. 이것의 덩어리[램프(lamp)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것은 다른 유리를 착색시키거나 불투명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장식품 등을 제조할 때 램프 가공용으로 사용하며 자기 등에 에나멜을 입히는데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덩어리 상태의 비트리트(vitrite)를 포함하며, 이것은 낮은 녹는점(melting point)을 가지는 유리의 일종으로 전구(電球) 기저부(base)에 있는 접점부분의 절연용에 사용한다. 이것은 이산화망간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흑색의 빛깔을 띄며 따라서 기부의 내부 부속품이 보이지 않도록 해준다.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 · 플레이크(flake) 모양의 유리[비트리트(vitrite)와 “에나멜”유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제3207호)**.

70.02 -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 구(球)

7002.20 - 막대(rod)

- 관(管)

7002.31 --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7002.32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7002.3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중공이 아닌 유리로 만든 구(solid glass ball) :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조·압축·이중나선제조기(double screw machine)에 의하여 제조되며 특히 유리섬유 제조용 원료나 석판의 제조용에 사용한다.
- (2) 여러 가지 직경의 유리 막대(rod)와 관(管 : tubing) :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상법(引上法 : drawing)[관(管)의 경우에는 취입법(吹入法 : blowing)을 병용한다]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예: 화학기기와 공업용기기 ; 섬유공업용 ; 온도계·앰플(ampoul)·전기나 전자용의 전구와 밸브·장식품의 제조]. 형광등용으로 사용하는 유리관(주로 광고용으로 사용한다)은 인상(drawn)하면서 길이 방향으로 일정하게 분할해서 만든다.

이 그룹은 “에나멜(enamel)” 유리의 막대 모양이나 관(管) 모양 유리를 포함한다[“에나멜(enamel)”유리는 제7001호 해설 참조].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구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유리의 막대(rod)와 관(管)도 마찬가지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즉 인상법(引上法)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지거나 일정한 길이로 단순 절단하여 그 양끝이 매끄럽게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완성품이나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든 구(球)·막대(rod)·관(管)은 제외하며 ; 이러한 제품은 해당 각 호에 분류한다(예: 제7011호, 제7017호, 제7018호, 제90류). 가공은 하였어도 특수 목적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면 제7020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원료 상태의 유리에 형광 물질을 첨가하여 만든 유리관(일정 길이로 절단했는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반면에 형광 물질을 내부에 도포(塗布 : coated)한 관(管)은 다른 가공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011호).

완구용의 성질을 가진 유리로 만든 구(어떤 형태로든지 줄무늬가 있는 유리제 공기돌과 어린이 게임용의 소형 포장한 유리구슬)는 제9503호에 분류한다. 성형 후 연마하여 만드는 병마개용의 유리구는 제7010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구(球)상의 유리입자(glass grain)[직경이 1mm를 초과하지 않는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도 제외한다(예: 도로변의 게시판이나 반사판이나 영화 스크린판의 제작용이나 항공기 제트 엔진이나 금속 표면의 세척용에 사용하는 것)(제7018호).

70.03 -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7003.19 -- 기타

7003.2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7003.30 - 프로파일(profile)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와 롤법으로 제조한 롤 유리(rolled glass)를 분류한다[다만, 판상(두께가 어떤지와 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이나 프로파일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반사·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가공하지 않은 판유리(unworked plate glass) : 이것은 표면이 오돌토돌하거나 거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투명하다. 이것은 또한 금속산화물이나 그 밖의 염(salt)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인공 착색된 것도 있다. 표면이 연마된 판유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005호)**.

(B) 전체적으로 다소 불투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불투명한 유리 : 이것은 때때로 외양이 대리석·자기·설화석고(alabaster)와 비슷하게 만들어지며 이 형태의 유리는 흑색·백색이나 그 밖의 색으로 착색되고 평판 모양이나 줄무늬가 있으며 벽 표면의 장식용·세면대·계산대·책상·탁상·조작대 등의 윗부분 제조용·비석의 명판용·광고판·사인판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리는 한 면이나 양면에 기계로 연마작업을 계속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마작업을 거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005호)**. 미가공 상태에 있는 이 유리는 압연기와 접촉에 의하여 생긴 표지가 나타나며 주입(casting)할 때 생기는 모래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젖빛유리(milk glass)는 부착시키는데 편리하도록 골이 지게 하거나 표면을 거칠게 한 경우도 있다.

(C) 제조과정 중에서 생긴 표면이 불규칙한 불투명 유리 : 이러한 유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rough cast glass·cathedral glass·hammered cathedral glass 등 ; 한 면에 무늬(줄무늬·다이아몬드형·용기선 무늬 등)를 새겨놓아 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부조(浮彫) 무늬 유리 ; 물결 모양의 유리와 주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소위 고대풍의 유리(즉, 기포를 함유한 유리·표면에 잔금이 있는 유리·그 밖의 의도적인 "흠(defect)"이 있는 유리). 이러한 종류의 유리는 전체적으로 착색이 된 것도 있으며, 공장·창고·사무실·목욕실 등의 창과 일반적으로 이러한 창에 부착하여 빛의 명암도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유리는 그 제조과정의 특성 때문에 더 이상의 가공을 해도 평판 모양으로 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호에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만**을 포함한다.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 방법은 대형 판유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롤법으로 대체되기도 한다]에 있어서 용융유리(molten glass)를 고정된 테이블에 부어 넣는다. 유리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이블의 측면에 두 개의 금속테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도가니가 비게 되면 매우 무거운 금속 롤러가 테위를 굴러 점착성의 유리를 테의 두께가 되도록 압착한다. 다음 이 유리가 요구되는 경도에 이를 때 서서히 소둔로(燒鈍爐)나 유리용해로(lehr)에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마침내 완전히 냉각된다. 주물(鑄物)안에 프로파일(profile)(예: U자형)은 반응용(反鎔融) 상태에서 유리 리본을 길이 방향으로 구부려 얻어질 수도 있다.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에 있어서는 용융유리(molten glass)를 롤러 사이에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연속된 리본 모양·판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의 것을 얻으며 그리고 나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유리용해로(lehr) 속으로 운반한다.

유리의 표면에 부조(浮彫)무늬를 하거나 단련 등에 의해서 각인하는 것은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나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중에서 이루어진다. 주입법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半)용융(鎔融) 유리의 상태에서 모양을 새긴 주입 테이블이나 롤러에 의해서 그 모양대로 새겨진다. 롤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모양이 되어 있는 마지막 단계의 롤러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늬가 새겨진다.

위에서 설명한 유리의 형은 제조과정 중에 구멍이 생기거나 망입(網入 : wired)을 할 경우도 있다. 판 모양·부조(浮彫)무늬·캐시드럴(cathedral)과 이와 유사한 형의 유리는 파괴나 파손을 막기 위하여 망입(網入)이 행하여지며 이와 같이 해서 만든 유리는 건축용에 적합하다. 망입(網入)유리는 압연되는 때에 연한 유리 속에 망선형(網線型)의 철망(鐵網 : steel wire)을 끼워 넣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호의 유리는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로 입혀지는 경우가 있거나 흡수·반사·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로서 계속적인 가공을 한 유리는 다른 호(예: **제7005호·제7006호·제7008호·제7009호**)에 분류하며, 또한 제조과정 중에 롤법에 의한 가공이 된 안전유리(safety glass)(**제7007호**)는 **제외한다.**

70.04 -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7004.90 - 그 밖의 유리

이 호에는 **반드시**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로 가공하지 않았으며 시트(sheet) 모양의 것에 **한정한다**(절단하여 성형했는지에 상관없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특수한 형태의 유리제품은 제조할 때는 예외이다) 비기계적인 취입법(吹入法)의 제조과정은 주로 인상법(引上法)(예: Fourcault, Libbey-Owens나 Pittsburgh process)이나 취입법(吹入法)을 병용한 인상법(引上法)에 의한 여러 가지의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다.

이 호의 유리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두께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7003호**의 주입법(casting method)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보다도 얇다. 그것은 또한 덩어리 상태에서 착색되거나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를 입히거나 흡수·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는 더 가공하지 않고 제조할 때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수가 많다. 이 유리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창·문·진열창·시계·온실·액자 등 뿐만 아니라 가구용품의 부분품·사진판·안경용 평면 유리 등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이지만 표면이 연마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7005호·제7006호·제7009호 등 해설 참조).

70.05 -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7005.29 -- 기타

7005.30 - 망입(網入) 유리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플로트유리(float glass)를 분류한다. 이의 원료는 노(爐 : furnace)에서 용융(鎔融)된다. 용융(鎔融)된 유리(molten glass)는 노(爐)에서 용융금속으로 만든 플로트 탕(float bath)에 공급된다. 용탕에서 이 유리는 액층 상태의 평면을 이룬 후 액체표면이 매끄럽게 된다. 이 상태에서 플로트 탕 끝에 닿기 전에 어떠한 표시나 일그러짐 없이 물을 통과시켜 충분히 굳어지게 온도를 냉각시킨다. 탕으로부터 이 유리가 소둔용 레어(annealing lehr)를 통하여 옮겨지면 그 유리의 끝이 냉각되고 절단될 수도 있다. 이 유리는 표면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의 결과로 완전한 평판 유리가 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7003호와 제7004호의 유리로서 **표면을 연마한(ground or polished) 것을 분류한다**(보통 두 가지 공정이 병행된다).

표면의 연마공정에서 유리는 덧 씌운 철제 디스크(disc)의 회전작용에 의하여 연마하게 한다(연마재료를 함유한 용액을 흘러넣어 주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리 표면은 매끄럽게 된다. 투명도는 펠트(felt)에 철단(산화철)을 침투시켜 이를 피복한 디스크(disc)를 갖춘 기계로 광택을 냄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표면연마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쌍연마기계는 유리의 양면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최종 광택작업은 이따금 행해진다.

이 호의 유리는 덩어리 상태로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유리는 종종 창·문·자동차·선박·항공기용 등에 사용하며, 거울·테이블과 책상의 윗부분·선반·진열장 등의 제조와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나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을 한 시트(sheet) 모양 유리·곡면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제7006호·제7007호·제7009호 등)**.

70.06 - 제7003호 · 제7004호 ·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 가장자리 가공한 것 · 조각한 것 · 구멍을 뚫은 것 · 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 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 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곡면유리 · 구부린 유리** : 즉, 평면 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적합한 노(爐)에서 주형을 할 때)으로 제조한 특수 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 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 · 광택을 낸 것 · 둥글게 한 것 · 노치한 것(notched) · 모따기한 것(chamfered) · 사각지게 한 것(bevelled) · 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 · 저울 · 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 · 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 · 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 · 지시판 · 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 · 창유리 · 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나 홈이 파진 유리**
-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酸)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 젓빛유리 ;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 · 부식한 유리 ; 에나멜을 칠한 유리(즉, 에나멜이나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 · 장식 · 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 · 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사각(斜角)이나 구멍이 있는 유리나 사인판으로 만든 지시판(finger plate)[문이나 스위치(switch)용]과 사각 · 착색 무늬나 그 밖의 장식이 되어 있는 지시판도 이 호에 포함한다.

사진 · 그림 등의 틀에 맞게 디자인된 목재 · 금속에 끼워있는 유리판은 각각 제4414호나 제8306호에 분류하며 ; 한쪽 표면에 인쇄된 그림이 있는 장식적인 유리거울은 프레임(frame)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7009호나 제7013호에 분류한다. 유리판으로 만든 서빙트레이(serving tray)로서 프레임(frame)과 핸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착색에 상관없이 제7013호에 분류한다. 광고판 · 사인판 · 표찰 · 패널 · 문자판 · 숫자판과 이와 유사한 연속도안으로서 지 · 판지 · 펠트(felt) · 금속 등으로 뒷면에 붙인 것이나 틀에 끼워져 있는 것은 제7020호(또는 조명용이면 제9405호)에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 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지지 않은 가구 제품의 유리판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하고(조립여부에 상관없다)명백히 가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가구 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사진용 유리판[감광(感光 : sensitised)한 것 · 노광(露光 : exposed)한 것 · 현상(developed)한 것]은 제37류에 분류한다. 전도성이 있는 금속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작용하는 금속 스트립이나 디자인을 붙인 가열용 전열유리판은 제85류에 분류한다.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강화 안전유리

7007.1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19 -- 기타

- 접합 안전유리

7007.2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29 -- 기타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접합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개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 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塗布 : coated)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 이 유리판을 가열·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laminated safety glass)는 대개 파편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 유리·선박의 선창용 유리·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eyepiece)와 가스마스크나 운전사헬멧 용의 안경에 사용한다. 방탄유리(bullet proof glass)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한다.

절연용 복층유리(multiple-walled insulating glass) : 예를 들면,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유리섬유를 끼워 넣은 샌드위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7008호**에 분류한다.

위에 기술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외의 강화유리와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예: 강화유리로 만든 밑이 평평한 큰 컵·봉구산업으로 보강된 접시와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에 대용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류**).

70.08 -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이 호에는 유리로 만든 복층절연 유닛(multiple-walled insulating units)을 분류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것은 건조 공기나 불활성 가스층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때로는 내부적으로 칸막이가 된 둘 이상의 유리패널[시트(sheet)·판·플로트(float)나 두드린 것(hammered)이나 cathedral 형태의 것]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가장자리를 금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접합체로 밀폐하여 완전한 밀폐유닛으로 만든다.

복층절연유리의 다른 형태로는 두 매의 판 유리사이에 유리섬유(glass fibre)를 끼워넣은 것이 있다.

이들 유리는 창·지붕 등에 사용하며 어느 정도의 단열과 방음의 역할을 하고 또한 응축(condensation)을 감소시켜준다.

70.09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 기타

7009.91 -- 틀이 붙지 않은 것

7009.92 -- 틀이 붙은 것

“유리거울(glass mirror)”이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 은이나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도포(塗布 : coated)한 것을 말한다.

은도금 방법(silvering method)에 있어서는 질산은에 암모니아수를 희석한 용액[주석산나트륨 칼륨이나 전화당(轉化糖 : invert sugar)을 기본 재료로 한 환원액과 혼합한다]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얻은 용액을 깨끗하게 씻은 유리의 표면 위에 부어 넣는다. 그러면 은염이 환원되어 영구적이고 빛나는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의 침착물이 형성된다.

백금침전방법(platinum deposition process)에 있어서는 백금의 합성물을 유리의 표면에 칠하고 나서 연화(軟化)할 때까지 가열한다. 이렇게 하면 매우 견고한 금속도막(金屬塗膜)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금속의 피복(특히 은도금의 경우)을 보호하기 위하여 때때로 한 층 이상의 바니시(varnish) 도장이나 전해에 의한 은도금이 이루어진다. 이때 그 자체는 바니시 도장으로 보호된다.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 크기의 성형된 거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이나 벽걸이식 거울 포함); 주머니용 거울(보호용 케이스가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凹면경이나凸면경과 백미러(차량용)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직물 등으로) 받친 것이나 틀을(금속·목재·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패각·진주·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마루나 지면에 설치하도록 만든 거울[예: 양복점의 탈의실(fitting room)이나 양화점에서 사용하는 큰 전신거울(cheval-glass)이나 스윙거울(swing-mirror)]도 제94류의 주 제1호나목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한쪽 표면에 인쇄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울도 분류한다(거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틀에 들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다만, 해당 인쇄된 그림이 거울로서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유리장식품으로서 **제7013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94류**에 속하는 가구의 부분품으로 된 거울(예: 옷장의 문)은 그 가구와 함께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추가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어떤 다른 부분품을 첨가함으로써 다른 물품으로 전환된 거울, 예를 들면, 손잡이가 있는 급식쟁반으로 사용하는 것(**제7013호**). 반면에 단순한 한장의 거울로 만든 테이블 센터(table-centre)는 이 호에 분류한다.
- (b)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대(mount)나 틀(frame)이 붙은 거울[천연이나 양식진주·다이아몬드·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이나 재생의 것)의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나 소량의 장식을 한 것은 **제외한다**](**제7114호**)이나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다른 식으로 사용한 대(mount)나 틀(frame)이 붙은 거울(**제7116호**)
- (c)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거울(**제90류**)(관련 해설 참조)

- (d) 완구·게임용구·수렵용구를 구성하는 거울과 다른 요소가 결합된 거울(예: lark mirror)(제95류)
- (e)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거울(제9706호)

70.10 -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 · 단지 · 항아리 · 약병 · 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 - 앰플

7010.20 -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90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가루 · 알갱이 등) 상태의 물품을 상업상으로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용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의 카보이(carboy) · 데미존(demijohn) · 병[사이펀(syphon) 꽃병을 포함한다] · 약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이러한 용기는 화공약품(산 등) · 음료 · 기름 · 육추출물 · 향수 · 의약품 · 잉크 · 글루(glue) 등의 용기로서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이전에는 취입법(吹入法 : blowing)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그의 대부분이 압축공기의 작용에 의하여 성형되는 주형틀 내에 기계로 용융(鎔融)유리(molton glass)를 자동적으로 주입시켜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보통의 유리(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병(예: 향수용)은 납 크리스탈로 만들며, 약간의 큰 카보이(car boy)는 석영유리로 만든다.

위에 기술된 용기는 일반적으로 몇가지 형태의 폐쇄장치가 있는데 ; 즉, 보통의 마개[코르크(cork)나 유리로 만든 것 등] · 유리구 · 금속의 뚜껑 · 나사식 뚜껑(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특수기구[예: 맥주용 · 탄산수의 병용 · 소다수용의 사이펀(syphon)용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용기는 연마 · 절단 · 사취입가공(砂吹入加工 : sand-blasted) · 식각(etched) · 조각(engraved) · 장식(이것은 특히 향수용과 액체병에 적용된다) · 락무늬 · 고리버들 세공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료[고리 · 짚 · 래피어(raffia) · 금속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포함하며 ; 그리고 병이 목에 텀블러캡(tumbler-cap)이 부착된 것도 포함하며 ; 이들은 물방울이 떨어질 때 이를 측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눈금이 매겨진 것도 있다(단,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 (B) 식료품(조미료 · 소스 · 과일 · 사탕조림 · 벌꿀 등),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얼굴용 크림 · 헤어로션 등) · 의약품(연고), 연마제와 조제청정제 등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의 용기로서 사용하는 단지 · 항아리와 이와 유사한 용기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유리(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주형틀 내에서 가압하여 압축공기로서 취입가공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주둥이가 넓고 목이 짧으며(만일 있다면), 보통은 뚜껑이나 마개를 받칠 수 있는 가장자리나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 중 어떤 것은 코르크(cork)나 나사식 마개로 폐쇄할 수 있게 된 것도 있다.

병과 같이 이러한 제품은 사취입가공(砂吹入加工 : sand-blasted) · 절단 · 식각 · 조각 · 장식 · 락무늬 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C) 앰플(ampoule) : 보통 인상 가공한 유리관을 봉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혈청과 그 밖의 의약품 · 액체연료(예: 담뱃불 용 라이터의 기름을 넣는 앰플) · 화학품 등의 용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D) 튜브상 용기와 이와 유사한 용기 : 일반적으로 유리관을 램프 가공이나 취입 가공(blowing) 하여 제조하며 의약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유리로 만든 보존병을 포함한다.

용기와 함께 제시하는 마개(어떤 재료인지에 상관없다)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유리로 만든 마개와 그 밖의 폐쇄장치도 분류하는데 이는 보통의 유리나 납 크리 스타로 만들어지는 것과 연마·절단·모래취입가공(砂吹入加工 : sand-blasted)·식각·장식이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병마개용으로 사용하는 유리구도 포함되며 이러한 구(ball)는 유리의 슬래브(slab)를 절단하고 성형 후 기계적인 가공에 의하여 공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병과 플라스크 : 전부나 대부분이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피복된 것(**제4205호**)
- (b) 진공 플라스크나 그 밖의 진공용기에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병(**제7020호**)
- (c) 디칸터(decanter)·음료용의 유리용기와 가정용품으로 사용하는 그 밖의 유리용기(**제7013호**)(단, 주로 상업상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용기는 **제7013호**에서 제외한다)
- (d) 유아용의 젓병(**제7013호**)
- (e) 실험실용 유리제품·위생용 유리제품·의약품용 유리제품(**제7017호**)
- (f) 상점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특수 진열병과 진열단지(**제7020호**)
- (g) 향수분무기용의 병·플라스크 등(**제7013호**), 향수용 분무기(**제9616호**)와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제9617호**)

70.11 -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기 램프 · 광원,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 전등용

7011.20 - 음극선관용

701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로서 부속품을 **부착하지 않은** 전구, 전자관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어떤 형태나 크기의 것. 이들은 조명용이나 그 밖의 목적(백열전등이나 방전등 · X선관 · 라디오용 진공관 · 음극선관 · 정류관이나 그 밖의 전자진공관 · 적외선 전등)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이들 외피는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대량으로 제조되며 윤을 안나게 하거나 착색을 하거나 젓빛깔을 내게 하거나 금속을 입히거나 형광성 물질을 도포(塗布)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유리로 만든 외피(envelope)의 부분품(텔레비전수상기용 전면판이나 원추형음극선관 · 스포트라이트 진공방전관 반사경 같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 (B) 명백히 전기램프용이나 광원(光源)용으로 제작된 끝부분이 좁은 유리관이나 광고신호용의 형으로 구부린 유리관

- (C) 형광물질(예: 규산염아연 · 붕산카드뮴 · 텅스텐산 칼슘)로 안을 도포(塗布)한 유리관

일련의 가공[필라멘트나 전극의 삽입 · 보호관의 배기 · 하나 이상의 희가스(rare gas) · 수은 등 주입 · 뚜껑이나 커넥터(connector) 부착]을 거쳐 이러한 외피들이 전기램프와 광원(光源), 음극선이나 이와 유사한 제85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

위의 모든 물품에는 보통의 유리 · 크리스탈 유리나 석영유리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유리관(管 : glass-tube)[끝을 불로 광택을 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되어 매끄럽게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덩어리 상태의 유리에 형광 물질(예: 우라늄산나트륨)이 첨가하여 제조한 관(管)인지에 상관없다](**제7002호**)
- (b) 폐쇄되었거나 부속품을 부착한 유리로 만든 구 · 튜브와 외피(velope)과 완성품인 진공방전관 · 튜브와 진공관(**제8539호 · 제8540호 · 제9022호** 등 참조)

[70.12]

70.13 -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 유리 도자제의 것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7013.28 -- 기타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7013.37 -- 기타

-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7013.42 -- 선팡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7013.49 -- 기타

-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7013.99 -- 기타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pressing)이나 취입(blowing)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분류한다.

- (1) **식탁용 유리제품·주방용 유리제품** : 예를 들어, 잔류(glass·goblet·tankard)·디켄터(decanter)·유아용 젓병·주전자류(pitcher·jug)·플레이트(plate)·샬러드그릇·설탕그릇·소스그릇·과실그릇·과자그릇·전채그릇·쟁반류·알그릇·버터접시·기름이나 식초통·접시(식탁용이나 조리용 등)·스튜팬·캐서롤·트레이·소금그릇·설탕 용기·칼 놓는 대·믹서·식탁용의 혼드는 종·커피 포트와 여과기·설탕절임 그릇·눈금이 매겨진 주방용품·플레이트 워머(plate warmer)·식탁용 깔개·가정용 우유 젓는 기계의 부분품·커피 가는 기계용 컵·치즈접시·레몬즙 짜는 그릇·얼음 통
- (2) **화장실용 유리제품** : 예를 들어, 비누용 접시·스펀지 그릇·액체 상태의 비누 용기·후크(hook)와 레일(rail)(수건 등에 사용한다)·파우더 그릇·향수병·화장용 분무기의 부분품(머리부분 **이외의** 것)·칫솔걸이 등
- (3) **사무용 유리제품** : 예를 들어, 문진·잉크스탠드와 잉크웰(inkwell)·북엔드(book end)·핀통·펜접시·재떨이 등
- (4) **실내장식용 유리제품**과 그 밖의 유리제품(교회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예를 들어, 꽃병·장식용 과실그릇·작은 조각상·기호품(동물·꽃·잎·과실 등)·테이블 센터(**제7009호**의 것은 **제외한다**)·수족관(aquaria)·향료용 노(burner) 등과 풍경을 담은 기념품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의 유리·납 크리스탈·팽창계수가 낮은 유리(예: 봉산규소유리)나 유리도자재료(특히 뒤의 들은 주방용 유리제품에 사용한다)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또한 색깔이 없는 것·착색이나 광택 유리제인 경우도 포함되고 절단·반투명, 식각이나 조각, 그 밖의 장식이 된 것을 포함하며 도금한 유리로 만든 것(예를 들면, 손잡이가 부착된 쟁반)도 포함한다. 그러나 단순한 거울로 만든 테이블 센터(table-centre)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009호)** 해설 참조).

한편 이 호에는 거울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인쇄된 그림이 있어서 거울로 사용할 수 없는 장식적인 물품도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제7009호**에 분류한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예: 비금속·목재 등)과 결합된 유리제품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 제품의 특성을 잃지 않은 제품만 이 호에 분류한다.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오직 미미한 장식품으로서** 제시된다면 ; 사용한 유리 제품은 이 호에 분류하나 소량 이상의 장식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114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유리거울(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제7009호**)
- (b) 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보통 물품의 상업상 수송용·포장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과 보존병(**제7010호**)
- (c)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제7016호**)
- (d) 내부장식용에 적합한 종류의 **제7018호**의 물품[예: 글라스 비드(glass bead)로 만든 인조 꽃과 인조 잎, 램프 가공한 유리로 만든 장식용 물품]
- (e) 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
- (f)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g)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제9616호**)
- (h)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vacuum flask)와 그 밖의 진공용기

70.14 -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A) **신호용 유리제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도로표지 반사용[예: 패널(panel) 모양·판 모양·기둥 모양(柱狀) 등]·광고표지용이나 자전거·자동차 등의 간단한 반사경에 사용한다. 신호용 유리 제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철형(凸形)·반구(半球)형이나 홈이 평형으로 되어 있는 평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투사되는 광선(예를 들면, 자동차의 헤드 램프 등에 의해)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둡고 먼 거리에서 물건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 (B)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고도 약간의 광학적 효과를 가지도록 제조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자동차의 헤드 램프·주차등·방향지시등·자전차 후측등·도로용 교통등·특정의 부표(buoy)·스포츠 라이트 전구·회중전등(pocket lamp)·전기토치(electric torch)·배전반(switchboard)이나 패널라이트(panel light)용 렌즈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보통의 확대용 유리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광학소자의 블랭크(blank)와 광학적 가공을 필요로 하는 광학소자도 포함한다.

광학적 가공(optical working)이란 표면을 처음에는 거칠게 연마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질이 좋은 연마재료로 연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초벌 연마(roughing)·미세조정 연마(trueing)·마무리 연마(smoothing)·광내기 연마(polishing)의 순으로 연속작업이 행하여 진다.

광내기 연마(polishing)에 **선행하여** 앞에서 설명한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표면의 전부나 일부분에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가하여 일정한 광학적 특성을 갖게 되는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장착(mount)한 것인지에 따라 제9001호나 제9002호에 분류한다 - 해당 해설 참조].

유리의 디스크(disc)나 렌즈의 가장자리에 단순히 연마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광학적 가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유리의 시트(sheet)·스트립(strip)·럼프(lump)나 슬래브(slab)를 단순한 주형이나 압축이나 절단에 의하여 제조한다.

이러한 물품은 비록 틀이 부착된 것·표장(set in a mounting)한 것이나 반사면을 뒤에 댄 것 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하나 완성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한다**[예: 비(卑)금속으로 만든 신호관·숫자관·문자관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표장의 경우에는 제8310호에 분류하고, 자전거나 자동차의 헤드 램프·헤드라이트나 주차등의 경우에는 제8512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광학용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제7015호 해설 참조)
- (b)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로 제시하는 구(球) 모양의 유리(제7018호의 해설 참조). 반면에 이 호에는 이러한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로 도포(塗布)하여 도로표지나 패널에 부착될 유리판을 **포함한다**.
-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소자(제90류)
- (d)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0.15 -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701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시계용 유리(시계용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유리로 평행면인지에 상관없다) ; 사진틀과 이와 유사한 것·메달·액체비중계·청우계와 이와 유사한 기구용에 사용하는 모든 유사한 유리도 역시 이 호에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이 호에는 숫자판이나 표면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특별한 경우로서 실험용 시계 유리나 거울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유리가 평행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약간의 광학적 성질을 가질 경우도 있으나 **제7014호**의 유리 제품의 주기능을 요구하는 광학적인 효과를 얻는 것인데 반해 이 항에 열거된 물품의 주기능은 보호가 주목적이다.

- (B) 안경용 유리[구부린 유리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비(非)시력 교정용 유리로 사용하는 것](예: 선글라스와 그 밖의 보호용 안경). 즉, 일반적으로 시력교정용 안경에 사용하는 유리보다 품질이 저질이다.

이러한 안경은 일반적으로 양면이 평행이며 실제적으로 광학적인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학적 가공이 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01호)**.

위 (A)와 (B)에 기술된 이러한 물품은 주로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제조한다.

- (1) 유리를 보통 직경이 80cm를 넘지 않는 중공(中空) 구면에 흡입 가공한다. 그리고 이 유리는 세 개부터 네 개 부분까지 분할되고 다음에는 끝에 다이아몬드 팁을 붙인 컴퍼스(diamond-tipped compass)같은 종류에 의하여 조그만 조각으로 절단된다. 다음에 각 조각의 가장자리는 주형 내에서 가열 압축에 의하여 내측이 구부러진다.
- (2) 판유리를 소형의 사변형이나 디스크(disc)로 절단하며 ; 그 후 가열하여 요(凹)형의 주형으로 이를 연(軟)하게 하여 구부리거나 회전바퀴에 의하여 이것을 구부리거나 또한 주형 내에 넣어 고온 프레스로 구부린다.
- (3) 용융(鎔融 : fused) 유리를 기계 프레스의 주형에 직접 부어넣는다.
- (4) 시계(clock or watch)의 침이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원형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판유리 조각을 한쪽 면이 요(凹)형으로 되도록 연마한다.

사용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원형·타원형이나 직사각형)의 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위의(1)에 기술된 공정에 의하여 만든 중공구면(中空球面) 유리와 이들의 세그먼트도 포함한다.

(C) 안경용 유리(블랭크, 즉, 단순히 압축하거나 주형하였으나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로 시력교정용 안경에 한정한다. 모든 경우에 시력교정용 안경공업에서는 용융(鎔融 : fused) 유리를 압축하여 소재로 제조한 유리를 완성품인 안경유리로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안경렌즈의 블랭크(blank)는 롤법(rolling)이나 인상법(引上法 : drawing)으로 제조한 유리를 조각으로 절단하고, 이를 노(爐)에서 연화(軟化)시켜 압축함으로써 블랭크(blank)로 제조한다. 어떤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든지 블랭크(blank)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로 사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표면처리(주로 연마하기)가 필요하다.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의 블랭크(blank), 즉, 단순히 성형만 하고 광학적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성형하기 전의 이러한 형태의 유리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제7006호**의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이 호의 물품과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판유리(특히 **제7005호·제7006호·제7007호**)
- (b) **제7014호**의 광학소자
- (c) 실험용에 맞도록 특수하게 조제된 시계용 유리(중심부에 구멍을 뚫었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되도록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등)(**제7017호**)
- (d) 시력교정용 안경유리나 콘택트렌즈로서 광학적 가공을 한 것(**제90류**)

70.16 -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7016.90 - 기타

이 호에는 압축하거나 주형[취입가공(blowing)을 사용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에 의하여 만든 일련의 유리제품을 분류하는데 ; 이러한 제품은 지붕·등근 천장이나 아치웨이를 덮는데 주로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함께 지하실·밀바닥·지하 복도 등의 내장벽을 슬래빙(slabbing) 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중공(中空)이 아닌 벽돌이나 중공 벽돌·스퀘어(square)·타일·슬래브(slab)와 여러 가지의 주형물(double-headed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건축용 장식품[장미 모양 장식·왕대공(king-post) 등]·계단의 층층대·난간의 구슬 모양 장식 등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반투명도가 각각 상이하고 가장자리가 연마되었거나 홈이 파졌으며, 무늬가 있을 수 있고, 금속선으로 보강된 것이나 금속·콘크리트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자이크 큐브(mosaic cube)**(보통 착색되어 있거나 한 면이 금박으로 입혀 있다)와 **소형의 직사각형**과 그 밖의 평판형 유리(은을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벽·가구 등의 표면재료로 사용한다). 이 물품들은 종이·판지·방직용 섬유재료나 그 밖의 재료로 표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착색된 **유리조각들(glass fragments or chippings)**(보통 젓빛유리의 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건축물 외관의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멘트에 새겨 넣어진다.

(2) 개인주택용 납틀 창문(lead light)·교회창용의 색유리(stained glass) 등 : 이러한 제품은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보통 덩어리 상태로 착색되거나 표면 착색이나 고대(古代) 유리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로 만든 패널(panel)·로제트(rosette) 등을 납으로 만든 살(came)에 끼우고 때로는 금속으로 만든 막대(rod)로 보강하여 만든 경우도 있다.

내화성을 더욱 많이 부여하기 위하여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살(came)을 사용하여 만든 유사한 것(특히 copperlight glazing)도 포함한다.

(3)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 유리 : 이들은 일반적으로 용융(鎔融) 유리(molten glass)에 압축 공기를 흡입하거나 가스화 물질을 주입하여 만든다. 이러한 제품은 부석(pumice-stone)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색이나 무색이다. 이것은 비중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특수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그래서 코르크(cork) 대용물로 사용한다] 쉽게 구멍을 뚫고, 톱질·줄질 등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열용 재료나 방음용 재료로서 앞에서 설명한 모양으로 건축용 등에 사용한다.

이 유리는 구멍대·구멍부표·장식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나,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유리로 만든 유사 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 (특히 제7013호·제7017호·제7020호).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7004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유리
- (b) 복층절연유리(**제7008호**)
- (c) 모자이크 큐브(mosaic cube)로 만든 완성 가공된 패널(panel)과 그 밖의 장식용 모티프(motif)(**제7020호**)
- (d)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납틀 창문(leaded light)(**제9706호**)

70.17 - 실험실용 · 위생용 · 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7017.20 - 선팡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7017.90 - 기타

이 호에는 **실험실용**(연구용 · 약학용 · 공업용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리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특수한 병(가스세정용 · 시약용 · Woulf씨 병 등) · 특수한 관(가스세정용 · 건조용 · 응축용 · 여과용 · 가스뷰렛 · 시험관용 등) · 교반기 · 증류플라스크 · 눈금이 있는 항아리 · 배양플라스크(Kolle · Roux 등) · 여러 가지 뷰렛 · 증발접시 · 메스플라스크 · 특수한 유리경과 수용기[진공식 · 멀티넥(multi-necked)식 등] · 특수한 점적용 병(點適用 瓶)(눈금이 있는 것 등) · 증류기 · 크리스탈 접시 · 건조 실린더 · 여과관과 접시 · 스푼 · 데시케이터 · 삼투압분석기 · 연결구류 · 응축기 · 증류 장치용의 수용기 · 특수 깔때기(마개가 있는 것 · 전구 모양의 깔때기 등) · 실린더 · 도가니 · 여과용 도가니 · 특수 플라스크(원추형 · multi-necked 등) · 특수 알코올버너 · 막자사발 · 저울용 그릇 · 피펫 · 여러 가지의 특수 진공용기(**제9617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 세정용 병 · 마개 · 주걱 · 단지[여과용 · 침전용 · 멀티넥(multi-necked)용 등] · 머플러 · 도가니 지지대 · 현미경의 슬라이드와 덮개유리 등

제9027호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지만 동시에 이 호의 실험실용 유리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분석이나 화학분석용의 기기의 분류에 대하여는 **제9027호**의 해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이를 참조하면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해설의 참조사항은 이 호에 포함될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산도계(**제9025호**의 것을 제외한다) · 검유기(galactometer) · 유지측정기(butyrometer) · 락토뷰티로미터(lactobutyrometer)와 이와 유사한 낙농품 검사용 기기 ; 단백측정기(albumenometer)와 요소측정기(ureometer) ; 유디오미터(eudiometer) ; 용적계 · 질소계 · 키프(Kipps)와 킬달(Kjeldahl) 장치와 이와 유사한 것 ; 칼슘측정기 ; 분자량 측정용의 빙점계와 비점계 등이다.

“위생용 유리제품 · 약제용 유리제품(hygienic or pharmaceutical glassware)”은 전문가의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특히 세척기 · 노즐[주사기용 · 관장(灌腸 : enema)용 등] · 요기(尿器 : urinal) · 침실용 변기 · 실내용 변기(chamber pot) · 타구(spittoon) · 부항단지(cupping-glass) · 젓짜는 기구(고무제 벌브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세안기(eye-bath)와 흡입기(inhaler) · 설압자(tongue depressor)를 포함한다. 외과용의 캣거트(catgut)를 감는데 사용하는 스푼(spool)과 릴(reel) 역시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눈금이 매겨진 것(graduated or calibrated)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의 유리로 만들어지나(특히 약학용과 위생용) 실험실용 유리제품은 불산염유리 · 석영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유리는 화학적 안전성이 크고 팽창계수가 낮기 때문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 용기(제7010호) ; 곡면으로 된 보통의 실험실용 시계접시(제7015호)의 해설을 참조) ; 공업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특수 화학 전시병과 유리제품(제7020호)
- (b) 제90류의 유리제품의 기기. 예를 들면, 피하주사기 · 특수 캐놀라(cannulae)와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구로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제9018호) ; 제9025호의 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동기구(浮動器具) · 온도계 · 고온계와 기압계 · 제9026호의 기기(액체의 유량 등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와 제9027호의 물리분석용기구나 화학분석용기기 등

70.18 -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과 반귀석 ·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과 반귀석 ·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7018.20 -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90 - 기타

이 호에는 직접이나 추가적인 가공 후에 사용하는 신변장식용이나 장식용의 여러 가지 유리 제품을 광범위하게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유리로 만든 비드(glass bead)**[예: 목걸이 · 목주 · 조화(造花) · 무덤 장식품 등에 사용하는 것; 방직용 섬유제품의 장식[트리밍(trimming) · 자수 등]과 핸드백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의 장식; 전기절연체용]: 이러한 비드(bead)는 조그만 구멍이 있고 모양이 다소 원형이다(착색된 것인지는 상관없다); 이것은 길이와 직경을 거의 같게 절단한 유리제 튜브로 만든다. 그 결과로 생긴 소형 실린더 모양의 것을 가루 상태 재료[목탄 · 흑연 · 플라스터(plaster) 등]의 혼합물과 함께 노(爐) 위를 회전하는 금속제 드럼 속에 주입하여 가열하면 실린더 모양의 유리는 연화(軟化)되고 마찰작용으로 이것을 대체적으로 구(球)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 이때 가루 상태 재료는 서로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여 준다.

(B) **유리로 만든 모조 진주(imitation pearl)**: 천연진주처럼 모조한 중공(中空: hollow)이나 중공(中空)이 아닌 것(solid)으로서 여러 가지의 색 · 형태나 크기의 것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중공(中空) 진주(hollow pearl)는 아주 지름이 작은 유리관의 주위에 얇은 구 모양의 유리를 취입(吹入)가공하고 다음에 이것을 각각 분리하여 만든다. 이러한 제조과정 때문에 이러한 진주는 두 개의 상대되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실로 켈 수 있다. 중공(中空) 진주는 유리의 막대(rod) 주위에 취입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수도 있다. 펄에센스(pearl essence)를 함유하고 있는 재료[특정한 물고기의 비늘을 암모니아에 분해시킨 것으로 만들어지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의 것]는 유리구의 내면에 취입가공되고 때때로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색 왁스를 내부에 충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드(bead)는 광택과 매우 약한 압력하에서도 부서진다는 점에서 천연진주와 쉽게 구별되어질 수 있다.

중공(中空)이 아닌 모조 진주(solid imitation pearl)는 동선 위에 용융(鎔融)유리를 방울형태로 부착하여 불 속에서 회전시켜 제조하거나 얇은 구리 관(copper tube)으로 꿰뚫은 조그만 형에 용융(鎔融) 유리를 주입하여 만든다. 이것을 냉각한 후에 질산에 넣어 금속을 용해시키며; 그러면 유리는 침식되지 않고 모조 진주에는 일정한 지름의 구멍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펄에센스(pearl essence)를 도포(塗布)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투명한 바니시(vernish)의 보호막을 도포(塗布)한다.

(C) **모조 귀석(imitation precious stone)**(모조 반귀석을 포함한다): 이는 **제7104호**의 합성이나 재생귀석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해당 해설 참조). 이 모조석은 금속산화물로 직접 착색되는 무색이나 유색의 굴절율이 큰 특수 유리[예: 스트라스(strass)]로 만든다.

이 모조석은 유리의 블록(block)을 필요한 크기의 단편으로 절단하여 얻으며 ; 그리고 나서 이 단편을 트리폴리(tripoli)가 도포(塗布)된 금속으로 만든 관위에 정돈하여 소형노에 넣으면(열의 작용에 의해) 이 단편들의 가장자리는 둥글게 된다. 이것들을(다이아몬드 모양이나 장미형 다이아몬드 등의 모양으로) 절단하거나(모조 cameo와 intaglio의 모양으로) 조각한다. 이러한 것은 직접 주형(예: 장식용으로 쓰이는 일정형의 것을 제조할 경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돌의 하면은 반사성이 강한 금속성페인트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

(D) 모조 산호와 같은 **그 밖의 유리 세공품**

(E) **앞에서 설명한 개별 물품들을 사용하여 조립한 여러 가지의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 예를 들면, 화원용의 꽃 · 잎 · 진주장식품 ; 비드(bead)나 관옥(管玉)으로 만든 것으로서 전등용의 갓 · 선반 등에 사용하는 술 fringe) ; 유리제 비드(bead)나 관옥으로 만든 발과 휘장과 유사하게 만든 테이블 매트 ; 유리제 비드(bead)나 모조귀석과 모조반귀석으로 만든 목주(rosary)

(F) **유리로 만든 안구(glass eye)[인체용의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예: 인형용의 것 · 로봇용의 것 · 속이 채워진 동물형 완구의 것) : 그러나 eye closing mechanism에 부착된 인형용의 유리안구는 **제외한다(제9503호)**.

(G) **유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 페이스트 모양의 유리를 취관(吹管)가공하여 제조한다. 이러한 물품은 선반 위에 놓아지도록 설계되었으며(동물 · 식물 · 작은 조각상 등) 일반적으로 투명유리(납 크리스탈 · 스트라스 등)나 “에나멜(enamel)”유리로 제조한다.

(H) 지름이 1mm를 초과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glass microsphere)** : 이들은 도로표지용 패널(panel) · 반사표지나 영화스크린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거나 비행기 제트 엔진이나 금속 표면의 클리닝(cleaning)에 사용한다. 이들은 횡단면이 중공(中空)이 아닌 완전한 구(球) 모양이다.

이 호에는 실내장식과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주조나 주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로 만든 꽃 · 잎과 과실 등은 **제외한다(제7013호)**.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소량의 장식용 **이상으로** 결합하여 램프가공한 유리로 만든 장식품이나 **제71류**에 목적상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정의된 것은 제71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유리의 가루 : 이것은 우편엽서 ·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으로 사용하며 많은 경우 흑 은도금이나 착색되어 있는 것도 있다(**제3207호**)

(b)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진주나 모조귀석 · 모조반귀석으로 장식된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 의 직물로 만든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4202호**)

(c) 유리로 장식된 그림엽서 · 크리스마스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4909호**)

(d) 유리로 만든 비드(bead)를 박아 넣어 만든 방직용 섬유제품(**제11부**와 특히 **제5810호**)

(e) 영화용 스크린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를 도포(塗布)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7호**)

(f)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진주나 모조귀석이나 모조반귀석 등으로 장식된 신발류 · 모자류 · 지팡이류와 산류(傘類)(**제64류 · 제65류와 제66류**)

(g) 모조진주나 모조귀석이나 모조반귀석을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에 부착하거나 세트한 것(**제7113호나 제7114호**)이나 **제7117호**에 해당하는 모조 신변장식용품(해당 해설 참조)

(h) 커프-링크스(cuff-link)(**제7113호나 제7117호** 중 해당하는 호)

제13부
70.18

- (ij) 완구·게임용구·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얇은 유리 불을 포함한다](제95류)
- (k) 단추(button)와 스테드(stud)(제9606호나 제71류 중 해당하는 호)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로빙(roving)
· 직물)(+)**

-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단연사와 이들의 매트(mat)

7019.11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12 -- 로빙(roving)

7019.13 -- 그 밖의 실[슬리버(sliver)로 한정한다]

7019.14 --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

7019.15 --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

7019.19 -- 기타

-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7019.61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7019.62 -- 그 밖의 촘촘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7019.63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하지 않은 것]

7019.64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한 것]

7019.65 -- 성기게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7019.66 -- 성기게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7019.69 -- 기타

- 화학적으로 접착한 직물

7019.71 -- 베일(얇은 시트)

7019.72 -- 그 밖의 촘촘한 직물

7019.73 -- 그 밖의 성긴 직물

7019.80 - 글라스 울(glass wool)과 글라스 울 제품

7019.90 - 기타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강하다[제11부의 어떤 방직용 섬유보다도 강하고, 인장강도 측면에서 적은 중량에도 강(鋼)보다도 강하다]; 늘려지지도 않고 오그라지지도 않아서 치수 안정성이 높다; 비흡수성이다; 타지도 않고 (일부의 경우에는) 소리와 열의 전도성이 낮다;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다; 자외선(UV)에 대한 감응성이 낮다; 전기 전도체로서는 좋지 않으며 유전 투과성(誘電 透過性)을 가지고 있다; 유기 매트릭스(matrix)와 조화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글라스 울(glass wool)(무작위 방향성 섬유)은 필라멘트가 랜덤한 방향성을 가지며 부피감 있는 제품을 형성하는 유리 제품으로서 대부분 절연 목적으로 사용한다.

유리 섬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a) (연속적인) 필라멘트 유리 섬유 : 직경이 보통 3에서 34 μm (미크론) 사이인 여러 개의 연속성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연속성 필라멘트는 성형 후에 연이은 제조 단계[잘게 자르기(chopping), 감기(winding), 꼬기(twisting), 짜기(weaving) 등]를 촉진하기 위해 하나의 스트랜드(strand)로 합쳐진다["사이징(sizing)"이라고도 부르는 공정이다].
- (b) 비연속적인 유리섬유(스테이플 유리 섬유) : 제조 공정 중에 필라멘트를 짧은 길이로 절단 (cut and broken)한 것으로, 이는 느슨하게 모아진 섬유의 연속적인 스트랜드(strand)로 당겨진다.

유리섬유는 이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제품들로 추가 가공되어질 수 있다.

- 화학적으로 접착한 섬유를 가진 매트(mat)와 스크림(scrim), 즉, 잘게 자른 스트랜드 매트, 연속성 스트랜드 매트, 직조되지 않은 전형적인 직물[예: 베일(얇은 시트(thin sheet)), 레이드 스크림(laid scrim) 등]
- 기계적으로 접착한 섬유를 가진 직물과 매트, 즉, 직물(woven fabric), 주름 없는(non-crimp) 직물, 편물(knitted fabric), 박음질한 직물(stitched fabric), 바늘로 꿰맨 직물(needled fabric)[예: 직조한 로빙(woven roving)], 성긴 망 직물(open mesh fabric), 스크린 등

유리섬유는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데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다음의 세 개의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I) 기계적 인발법(mechanical drawing)

이 공정에서는 모래·석회석과 고령토의 혼합물이 노(爐)에서 용해되어 유리를 생산하게 된다. 성분 구성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유리 형태가 생산될 수 있다. 이것은 전로(前爐)로 흘러 들어가는데, 전로의 밑바닥은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귀금속의 합금(보통 로듐이나 플라티늄의 것이다)으로 만들어진 부싱(bushings)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부싱(bushing)에는 용융된 유리 필라멘트가 통과되도록 많은 수의 작은 구멍들이 뚫어져 있다. 사이징(sizing) 처리(예: 실리콘 사용)가 이루어진 후에는, 형성된 스트랜드(strand)가 고속 맨드릴(high speed mandril) 위로 운반되어 지관(cardboard tube)에 감기거나 부싱(bushing) 밑에서 잘게 잘려진다. 얻어진 유리 섬유[단연사(chopped strand)]는 추가 가공하여 매트(mat)와 직물로 만들어진다.

(II) 원심인발법(centrifugal drawing)

이 방법은 용기에서 용융(鎔融)된 유리를 급속도로 회전하는 내화점토로 만든 디스크(disc)[디스크(disc)의 주위에 매우 많은 치차(齒車: teeth)를 부착한 것] 위에 떨어뜨린다. 노(爐: furnace)에서 나온 화염으로 가열된 디스크에 이 용융(鎔融)된 유리가 부착하지만 동시에 원심력의 작용으로 필라멘트 모양으로 인발된다. 이러한 필라멘트는 고정 테이블에 흡입되어 냉각 드럼에 감겨진다.

이 방법에 의하여 글라스 울(glass wool)이라 칭하는 단섬유가 생산되며 이것은 방적하지 않고 벌크 모양으로 사용한다.

(III) 흡입인발법(drawing by means of fluid)

이 방법에서는 노(爐)의 인발관을 통하여 흘러 나오는 용융(鎔融)된 유리의 필라멘트 위에 양측에서 흡입되는 고압증기나 압축공기를 분사하여 제조한다. 이와 같은 분사작용에 의하여 필라멘트는 제조과정 중에 짧은 길이로 절단되고 운활제가 도포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연속적인 섬유(continous fibre)는 드럼 위에서 감겨져 웹(web) 모양 [그 자체(절연용 모포)로 사용된다]을 형성하거나, 방적하여 실(yarn)로 만들 수 있는 스테이플 섬유를 형성한다.

유리 섬유로 만든 직물은 보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을 통해 얻어진다.

(I) 화학적 결속 :

- (a) 유리 베일(glass veil) 공정 : 습식(wet laid)이나 건식(dry laid)
- (b) 레이드 스크림(laid scrim) 공정

(II) 기계적 결속 :

- (a) 직조 공정 :

직기 또는 직조기로 경사(warp) 섬유(길이 방향)와 위사(weft) 섬유를 다양한 직조 문양 [평직(plain weave), 레노 위브(leno weave) 등]에 따라 교차시켜 짊으로써 촘촘한 직물 구조나 성긴 직물 구조를 형성한다.

- (b) 편직 공정 :

편직기는 길이 방향(경편직)이나 폭 방향(위편직)으로 편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속된 섬유의 고리(loop)를 교차시켜 짊으로써 평면 모양이나 관(管) 모양의 직물 구조를 얻을 수 있다. 경편직 기술은 종종 다층(多層) 직물을 박음질(stitch)하는데 사용한다.

- (c) 그 밖의 섬유 산업 공정 :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바느질 등

직물은 최종 제품을 얻는데 필요한 추가 공정 단계의 기술적 요구에 따라 촘촘하게 짊 구조 [예: 직조한 로빙이나 다축(多軸) 직물]이거나 성기계 짊 구조 [예: 성기계 직조한 망목 직물(woven open mesh fabric)이나 레이드 스크림(laid scrim)]을 가질 수 있다. 촘촘하게 짊 직물은 수지를 침투시키는데 필요하며, 반면에 성기계 짊 직물은 모기장이나 벽 보수용 강화망(reinforcement mesh)[망 구조를 통해 회반죽(render or plaster)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
* *

이 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 제품은 특히 다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A) 벌크 상태의 글라스 울(glass wool), 글라스 울로 만든 판자·패널·매트리스
- (B) 슬리버(slivier) 모양·로빙(roving) 모양·실 모양·단연사와 그 매트(mat)
- (C)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세폭(細幅) 직물을 포함한다]
- (D) 화학적으로 접착한 직물[베일(얇은 시트(thin sheet))을 포함한다], 레이드 스크림(laid scrim)

이 호에는 유리제 직물제품의 커튼·휘장과 그 밖의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의 실(thread)로 자수된 바탕천이 없는 화학 자수천이나 자수천은 이 호에 분류하나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의 자수천으로서 자수효과의 일부가 유리섬유로 만든 실에 의해 얻어진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810호)**.

*
* *

유리섬유와 유리섬유로 만든 직물의 용도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 (1) 기간시설용·환경용과 녹색 에너지 창출용[예: 다축(多軸) 직물로 보강한 풍력 블레이드, 도로 보강용 토목섬유(geotextile), 교량 구조 복합재 등]
- (2) 빌딩·건축용[예: 지붕 막(roofing membrane)·지붕 널(roofing shingle)·카펫·시멘트·석고 보드의 강화용, 건축 섬유용, 건물 외벽 피복용, 벽 수리용과 외부 단열 복합 시스템(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용 등]
- (3) 염색이나 인쇄될 수 있는 직물류의 모양으로 가구용과 실내 장식용(예: 가구 장식용·벽용 장식·무대 커튼·모기장·빛 가림망)에 사용한다.
- (4) 벌크 모양·노듈(nodule) 모양·펠트(felt) 모양·패드(pad) 모양·케이싱(casing) 모양(파이프용)이나 조물 모양의 섬유 형태[글루(glue)·피취(pitch)나 다른 재료로 침투된 것이나 종이·직물이나 금속망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열절연용(예: 지붕·굴뚝·보일러·노(爐)·스팀 파이프·스팀터빈몸체·관·얼음 찬장·냉장차의 절연용)에 사용한다.
- (5) 필라멘트 모양·실 모양·테이프 모양·조물 모양·직물 모양(천연의 레진·플라스틱·아스팔트 등이 침투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전기절연용(예: 전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전류운반 장치)과, 전자산업(자동자료처리기계, 전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PCB(인쇄회로기판)의 보강용으로 사용한다.
- (6) 벌크 모양·펠트(felt) 모양·매트리스 모양이나 강직한 보드 모양의 섬유형태로서 방음용[예: 플랫(flat)·사무실·선실·차량·극장용 등]에 사용한다.
- (7) 열가소성수지와 열경화성수지의 보강재로 사용한다. 즉, 액체저장과 수송용의 탱크·큰 통(vat)과 파이프, 공업이나 농업용도의 머신후드(machine hood)와 그 밖의 주형 부품, 자동차용 완충기, 케도차량용 장비, 철도 객차나 비행기, 가정용품, 보트 선체, 낚시대, 스키, 테니스 라켓과 그 밖의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제조공정과 많은 응용분야에 사용한다.
- (8) 그 밖의 여러 가지 공업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예: 공기조절용이나 화학공업용의 여과 제품,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강화, 의료, 포장재 강화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유리섬유를 압축하거나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단단하고 강직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제39류**)
- (b) 광물성 울(mineral wool)(제70류의 주 제4호 참조)과 **제6806호**의 그 제품
- (c) 루핑 보드(roofing board) :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유리 섬유망이나 직물로 된 기판을 완전히 둘러싸거나 기판양면을 피복한 것(**제6807호**)
- (d) 중간층이 유리 섬유로 된 복층절연유리(**제7008호**)
- (e) **제8544호**의 광섬유케이블, 애자(electrical insulator)(**제8546호**)와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제8547호**)
- (f) **제9001호**의 광섬유·광섬유다발과 광섬유케이블
- (g) 유리섬유로 만든 인형용 가발(**제9503호**)과 합성수지로 응결시킨 유리섬유로 만든 낚시대(**제9507호**)
- (h) 유리섬유로 만든 브러시(**제9603호**)



[소호해설]

소호 제7019.11호

단연사(chopped strand)는 다수의 평행 필라멘트를 함유하고 있는 실을 절단하여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단연사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몰타르 또는 여러가지 필터(공기, 기름 등)에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다.



소호 제7019.12호

유리 **로빙(glass roving)**은 평행한 스트랜드(strand)를 모은 것[어셈블드 로빙(assembled roving) 또는 멀티 엔드 로빙(multi-end roving) 이거나 평행한 필라멘트를 모은 것[다이렉트 로빙(direct roving) 또는 싱글 엔드 로빙(single-end roving)으로서 유리 섬유케이크(glass fibre cake)(뒷 부분 참조)로부터 의도적인 꼬임 없이 합친 것이며 일반적으로 지관(cardboard tube)에 감겨있지 않다.



기계적 인발(引拔) 공정 동안 얻어진 것으로서 부상(bushing) 아래의 유연한 지관(cardboard tube)에 감긴 유리 필라멘트를 "유리섬유 케이크(glass fibre cake)"라고 한다. 이러한 꼬지 않은 유리섬유 케이크(glass fibre cake)는 중간 생성물이며, 그것의 추가 공정과 분류는 필라멘트의 직경[미크론(micron)]과 중량[텍스(tex)]에 따라 결정된다.

필라멘트의 직경이 14 미크론 이하이고 중량이 300 텍스 이하인 유리섬유 케이크(glass fibre cake)는 가볍고 두꺼운 섬유로서 보통 "텍스타일 케이크(textile cake)"라고 부르며 실(yarns)과 가볍고 유연한 직물을 제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가볍고 두꺼운 섬유는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소호 제7019.19호**).

소호 제7019.13호

이 소호는 **슬리버(sliver)**를 포함한다. 슬리버는 보통 길이가 380 mm 미만인 짧은 스테이플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테이플 섬유는 꼬임이 없거나 거의 없이(미터당 꼬임이 5회 미만) 평행 상태로 느슨하게 정렬되어 있는 로프 모양의 스트랜드(strand)이다. 슬리버는 일반적으로 스테이플 섬유사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며 또한 와이어와 케이블의 제조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 소호의 **실(yarn)**은 꼬여 있으며 연속적인 필라멘트의 것이거나 스테이플 섬유의 것이다. 실은 보통 플라스틱 보빈(bobbin)에 감거나 금속제 경사빔(warp beam)에 감아서 제공한다.

이것들은 또한 텍스처화(texturise)하거나 부피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공정에서 유리 실(glass yarn)은 노즐 안으로 공급되는데, 이 노즐 안에서 공기흐름 때문에 요동이 생겨 고리(loop)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경미하거나 [텍스처화(texturising)] 상당한[부피 증가(voluminising)] 벌크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실은 보통 지관(cardboard tube)에 감아서 공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한다. 예:

- 벽피복용 직물(평평한 외관을 피하고자 할 때)
- 천장용 직물
- 단열 제품

소호 제7019.14호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mechanically bonded mat)는 유리 스트랜드(glass strand)로 만든 평평한 강화 제품으로서, 수백 개의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 스트랜드(glass strand)는 무작위로 배열된다.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에서 스트랜드(strand)는 박음질하거나 바늘로 꿰매어 합친다.

유리 스트랜드(glass strand)는 무작위로 배열된 평행 필라멘트의 형태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상없이 손으로 매트에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소호 제7019.15호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chemically bonded mat)는 유리 스트랜드(glass strand)로 만든 평평한 강화 제품으로서, 무작위로 배열된 수백 개의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에서 스트랜드(strand)는 절단 [비연속 스트랜드(discontinuous strand)의 매트]되거나 또는 절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속된 실(continuous thread)의 매트], 결합제로 함께 접착되어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배열된 평행 필라멘트의 형태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합제를 용해한 후에는 손상없이 손으로 매트에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소호 제7019.61호

춤춤하게 직조한 로빙 직물(규칙적인 성긴 구조가 없다)은 직기(織機) 위에서 직조하여 짠 것이며 도포하지도 않고 적층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들은 중량이 보통 제곱미터당 200 그램을 초과한다. 이것들은 대부분 복합소재 응용분야에 사용한다 (예: 풍력 에너지, 자동차 산업).



소호 제7019.62호

그 밖의 춤춤한 로빙 직물(규칙적인 성긴 구조가 없다) : 기계적으로 접착하였지만 직조하지는 않은 것으로서, 대부분 복합소재 응용분야에 사용한다.

접착은 일반적으로 박음질(stitching)로 이루어지지만, 바늘로 꿰매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형적인 제품은 다축(多軸) 직물(multi axial fabric), 복합직물(complex)이나 교직물(combination fabric)[멀티 엔드 로빙(multi-end roving)으로 된 단(短) 섬유로 직물]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다층 직물로서 박음질(stitching)로 함께 결합한 것이다.



소호 제7019.63호

츄츄하게 직조한 직물로서 실로 만든 평직의 것[도포하지도 않고 적층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벽 덮개용이나 단열용이나 방음용으로 사용한다.



소호 제7019.64호

츄츄하게 직조한 직물로서 실로 만든 평직의 것[(실리콘, PTFE, 알루미늄으로) 도포하거나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은 여러가지 공업이나 건축 응용분야에 사용한다. 예:

- 건축용
- 연기와 화염으로부터의 보호



도포한 것



적층한 것

소호 제7019.65호

이 소호의 **성기계 직조한 직물**은 세폭(細幅)의 성긴 망목 직물(mesh fabric)로서 규칙적인 "성긴(open)" 구조[예: 둥근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정삼각형이나 규칙적인 볼록 다각형]를 가지며 기계적으로 접착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들은 보통 건물의 정면 모서리 강화용이나 벽의 조인트 테이프(joint tape)로 사용한다.



소호 제7019.66호

성기계 직조한 직물로서 규칙적인 "성긴(open)" 구조[예: 원,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정삼각형이나 규칙적인 볼록 다각형]를 가진 것. 이러한 직물은 폭이 30 cm 초과이고 보통 건물 정면의 보강용으로 외부 단열 복합 시스템(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에 사용하거나, 대리석과 모자이크 강화용, 석고보드·벽·천장의 강화용으로 사용한다.

셀(cell)의 구멍크기가 18 mm 미만인 가벼운 망목 직물(mesh fabric)은 보통 방충망이나 빛 가림막으로 사용한다.



무겁고 성긴 망목 직물(mesh fabric)은 일반적으로 토목섬유 직물(geotextile fabric)이라고 부르며 토양 목적(예: 보강 또는 경사면 안정화)으로 사용한다.

특별한 방지제를 사용하거나 석영유리를 도포한 성긴 망목 직물(mesh fabric)은 일반적으로 고온 여과용이나 그라인딩 휠 보강용으로 사용한다.

소호 제7019.71호

베일(veil)[얇은 시트(thin sheet)]은 개별적인 유리 섬유(필라멘트)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만들어진 부직포이다. 이 섬유는 결속방법으로 함께 묶어서 압축시키고 보강실(대개 판에서 세로로 나열되어 있다)을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리매트(mats)와는 달리 이 제품의 각 필라멘트는 시트(sheet)를 손상하지 않고서는 손으로 떼어낼 수 없다.

얇은 시트(sheet)는 10mm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 웹(web)·매트리스와 그 밖의 절연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소호 제7019.72호

그 밖의 화학적으로 접착한 촘촘한 직물에는 복합직물(complex) [멀티 엔드 로빙(multi-end roving)의 단(短) 섬유(chopped fibre)로 된 로빙 직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가루 결합제와 함께 열접착을 통해 결합된 다층 직물이다.



소호 제7019.73호

그 밖의 화학적으로 접착한 성긴 직물에는 실(yarns)로 만든 레이드 스크림(laid scrim)(규칙적인 성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 포함될 수 있다.



70.20 -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공업용품 : 예를 들면, 가죽에 광택을 내도록 사용하는 포트·볼·실린더나 디스크(disc) ; 안전장치와 그 밖의 보호 장치 ; 그리스 컵 ; 실가이드(thread guide) ; 사이트 홀과 측정기의 유리판 ; S형태 관(管) ; 코일 ; 부식성 물질용의 배수관(석영유리로 만든 경우가 많다) ; 염산의 흡수드럼과 낙수대(落手帶)
- (2) 재배용품(탱크·통 등)과 원예용품[종(鍾) 모양 유리그릇 등]
- (3) 상점의 광고판과 상점의 창에 사용하는 문자·숫자·신호판과 그 밖의 모티프(motif)(인쇄된 그림이나 원문을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7006호·제7009호·제7014호·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진공 플라스크나 그 밖의 진공용기에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내장재(케이싱이나 그 밖의 보호막을 사용하여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나 진공용기로 변형한 것은 제외한다) : 이 호의 내장재는 일반 유리나 선팡창 계수가 낮은 유리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원통형이며 안쪽이 은이나 금으로 도금된 이중벽이다. 벽 사이 공간은 진공이며 벽은 밀폐된다. 이 호에는 유리 내장재**만** 포함한다. 완성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마개나 뚜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장착한 것인지 상관없다).
- (5) 그 밖의 잡품. 예: 어망용의 짜 ; 문·물통 등에 사용하는 손잡이 ; 수채화용의 용기 ; 새장용의 부속품(먹이통이나 수통 등) ; 상점진열용 병 ; 낙수관·알코올 버너(**제7017호**의 것은 **제외한다**)·피아노나 가구의 받침대 ; 유리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로 만든 완성된 패널(panel)과 그 밖의 장식용 모티프(motif)(틀에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구멍용의 부표와 구멍벨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산류(傘類)와 지팡이류에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손잡이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3호**)
- (b) **제8546호**나 **제8547호**의 애자와 전기 절연용 물품
- (c) **제90류**의 기기와 그 밖의 물품
- (d) **제91류**의 물품[예: 유리로 만든 클록(clock) 케이스(단순한 보호용 커버는 제외한다)]
- (e) **제92류**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예: 용융 실리카로 만든 음차(音叉 : tuning fork)]
- (f) 유리로 만든 가구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유리로 만든 가구 부분품(**제94류**)
- (g) **제95류**의 완구·게임용구·크리스마스트리장식품·납시용구나 수렵용구와 그 밖의 유리제품
- (h) **제96류**의 유리제품[예: 단추 ; 펜홀더 ; 연필꽂이 ; 펜촉 ; 라이터 ; 향수용 분무기 ;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ij)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 14 부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 7 1 류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주:

1.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다음 각 목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6부의 주 제1호가목과 이 류의 주 제2호부터 주 제11호까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

가.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 재생한 것)

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2. 가. 제7113호 · 제7114호 · 제7115호에서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예: 두문자(頭文字) · 테 · 외륜] 등과 같은 물품은 제외하며, 주 제1호나목은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주의 밑줄 친 부분은 임의 주이다.

나. 제7116호에서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를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품은 제외한다.

3.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과 콜로이드(colloid) 모양인 귀금속(제2843호)

나.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 · 치과용 충전재나 그 밖의 물품

다. 제32류의 물품[예: 러스터(lustre)]

라. 서포트된(supported) 촉매(제3815호)

마. 제42류의 주 제3호나목의 제4202호나 제4203호의 물품

바. 제4303호나 제4304호의 물품

사.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아. 제64류나 제65류의 신발류 · 모자류나 그 밖의 물품

자. 제66류의 산류(傘類) · 지팡이나 그 밖의 물품

차. 제6804호나 제6805호, 제82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 · 반귀석(천연의 것 · 합성한 것)의 더스트(dust)나 가루를 함유한 것,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 ·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 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제16부의 기계류 · 기기류 · 전기용품이나 이들의 부분품. 다만, 이들 제품과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 ·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 재생한 것)으로 된 것은 이 류로 분류하되,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제8522호)는 제외한다.

- 카. 제90류·제91류·제92류의 물품(정밀기기·시계·악기)
 타. 무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3류)
 파. 제95류의 주 제2호의 물품
 하. 제96류의 주 제4호에 따라 제96류로 분류되는 물품
 거. 오리지널 조각이나 조상(제9703호)·수집품(제9705호)이나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제9706호).
 다만,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은 제외한다.
4. 가.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
 다. 귀석·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백금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6.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른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은 제외한다.
7.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란 금속을 기본으로 한 재료의 한 면 이상에 뿔접·납접·용접·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비금속(卑金屬)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6부의 주 제1호가목의 것을 제외하고 제7112호에 열거한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9.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곶줄·펜던트(pendant)·타이핀(tie-pin)·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
 나.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예: 시가나 켈런케이스·코담배박스·구중제갑(cachou box)이나 환약갑·화장갑·돈지갑·목주]
 이러한 물품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합성하거나 재생한 귀석·반귀석, 거북귀갑, 진주 모패(母貝)·상아(ivory)·천연 또는 재생 호박·흑옥·산호 등과 결합되어 있거나 세트에 되어 있는 것인 지에 상관없다.
10.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사무용·종교용 물품이 포함된다.

제14부
제71류

11.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나 이와 유사한 것·헤어핀은 제외한다)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호주:

1. 소호 제7106.10호·제7108.11호·제7110.11호·제7110.21호·제7110.31호·제7110.41호에서 “가루”와 “가루 모양”이란 메시(mesh) 구멍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2. 이 류의 주 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7110.11호와 제7110.19호에서 “백금”이란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제7110호의 소호에 합금을 분류하는 경우 각각의 합금은 플라티늄(platin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중 각각 다른 금속보다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는 천연진주·양식진주·다이아몬드·그 밖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가공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었거나 세트로 된 것이나 실로 꿰어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이들을 가공과정에서 생긴 특정의 웨이스트(waste)는 제7105호에 분류한다.
- (2) 제7106호부터 제7111호까지는 귀금속(precious metal)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되지 않은 것), 반제품이나 가루 상태의 것으로 제3절에 해당되는 제품 상태에 미달한 것)을 분류하고,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그리고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귀금속”이란 은·금·플라티늄(platinum)을 말한다. 또한 “플라티늄(platinum)”에는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이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귀금속을 함유하는 합금[제2843호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플라티늄(platinum) 합금**-플라티늄의 함유량이 2% 이상인 합금
- (나) **금 합금**-금의 함유량이 2% 이상이고 플라티늄을 함유하지 않았거나 2% 미만 함유한 합금
- (다) **은 합금**-은의 함유량이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
- (라) **비금속(卑金屬) 합금(제15부)**-플라티늄·금·은의 함유량이 각각 2% 미만인 모든 합금

이 류의 주 제6호에 따라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금속에 대한 모든 규정은 앞에서 설명한 (가)(나)(다)의 합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나 은, 금, 플라티늄을 도금한 비(卑)금속이나 비(非)금속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주 제7호에 따라 “귀금속을 입힌 금속(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이란 금속의 한 면이나 양 면 이상에 뿔접·납접·용접·열간(熱間)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어떤 두께로든 입힌 것을 말한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판(plate)·시트(sheet)·봉(bar) 등은 대개 기저(基底 : foundation) 금속의 한 면이나 양 면에 귀금속을 피복하여 이들을 함께 가열하고 압연해서 얻는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선(wire)은 귀금속으로 만든 관(管)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심(芯 : core)을 삽입하고 나서 이들을 함께 가열하고 다이(die)를 통해 인발(引拔)하여 제조한다.

문맥상 별도의 해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금속을 박아 넣은 비금속(卑金屬) 제품도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예: 전기공업에 사용하기 위해 은대(銀帶 : silver strips)를 박아 넣은 구리판, 단련된(hammered) 금의 스트립(strips)이나 실(threads)을 박아 넣은 철강의 다마스킨(damaskeen) 가공품이라고 알려진 것].

이 류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은 전기분해, 증착(蒸着), 분사나 귀금속의 염 용액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들 도금된 비금속(卑金屬)은 도금 두께에 관계없이 각각 기초 금속이 속하는 류에 분류한다.

이 류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아교질(colloidal) 귀금속과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제2843호)
 - (b) 방사성 동위원소[예: 이리듐(iridium)192](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바늘(needles), 실(threads)이나 시트(sheet) 모양의 귀금속을 포함한다)(제2844호)
 - (c) 치과용 충전제로 특별히 조제된 합금(제3006호)
- (3) 보통 전부나 일부를 천연진주·양식진주·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은 제7113호부터 제7116호까지에 분류한다. 특히 이들 그룹에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이 포함되지만(제7113호와 제7114호의 해설 참조)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이 류의 주 제3호에 열거된 물품
- (b)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부분을 극히 작은 부착물[예: 모노그램(monograms)·페릴(ferrules)·림(rims)]같은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그 밖의 물품. 이들은 천연진주·양식진주·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과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의 손잡이가 달린 칼·펜나이프(pen-knife)·조각용구 세트·면도칼과 그 밖의 절단용품 류는 이들이 비록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된 머릿글자(initial), 모노그램(monogram), 림(rim) 등이 들어 있을지라도 **제82류**에 분류한다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절단용품 류는 이 류에 분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발(bowl), 꽃병과 그 밖의 자기나 유리로 만든 식탁용품은 이들이 비록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된 극히 작은 부착물이나 장식품(예: 외륜)이 들어 있을지라도 **제69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들 그룹에는 비금속(卑金屬) 물품이나 귀금속을 도금한 비(非)금속 물품(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물품은 제외)은 **제외한다**.

제14부
제71류

- (4) 모조 신변장식용품 : 이 류의 주 제11호(해당 해설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조 장식용품은 제7117호에 분류하나 이 류의 주 제3호에 열거된 제품은 **제외한다**.
- (5) 주화(coin)는 제7118호에 분류하고 수집품(collectors' piece)은 **제외한다(제9705호)**.
-

제1절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
(제7101호 - 제7105호)

71.01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썬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1.10 - 천연진주

- 양식진주

7101.21 -- 가공하지 않은 것

7101.22 -- 가공한 것

이 호에서 분류하는 진주는 진주 모패(母貝 : mother of pearl)처럼 해양이나 담수에 살고 있는 연체동물(준용 진주굴과 진주홍합)의 분비물이 퇴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진주는 빛이 나는 표면과 본질적으로 콘키올린(conchiolin)로 덮인 탄산칼슘의 층으로 되어 있다. 탄산칼슘의 층은 특징 있는 진주광택("orient")을 생성하게 하는 광학적 간섭과 회절을 일으키며 ; 콘키올린은 진주에 반투명성이나 "투명성"을 부여한다.

진주는 보통 백색이지만 회색·흑색·자색·적색·황색·녹색·청색 등의 유색이나 음영을 띠는 수도 있다.

진주는 보통 구형(球形)이지만 때로는 반구형(button pearls)이나 불규칙형[baroque 진주 또는 blister 진주]도 있으며, 그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진주의 모패(母貝 : mother of pearl) (**제0508호나 제9601호**)는 동질의 성분이나 보통 얇은 판(sheet)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 호는 역시 양식진주(cultured pearl : 사람의 간섭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도 포함한다. 이 양식진주는 굴의 외피에서 잘라 낸 액낭(液囊)에 진주의 모체인 구슬을 고착시켜 이를 다른 견강한 굴의 조직체에 삽입하여 양식된다. 수년간에 걸쳐 구슬은 천천히 겹쳐 쌓인 동심원상의 진주층으로 덮여진다. 양식진주는 외관상 천연진주와 매우 유사하나 특수한 장치(내시경)나 X-ray검사로 구별할 수 있다.

이 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 즉, 채집하여 단지 청결하게 한 것(예: 소금과 물로)·가공한 것[즉, 결함 있는 부분을 제거하려고 갈은 것, 구멍을 뚫거나 톱질을 한 것(예: 반이나 3/4로 절단한 것)]을 분류한다. 이 호의 진주는 수송 편의상 일시적으로 실로 꿰매질 수 있다. 세트와 장착된 진주나 등급을 매긴 후 실로 영구적으로 꿰맨 진주는 **제외한다**(예: **제7113호·제7114호·제7116호**에 적절하게 분류).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는 제97류(수집품이나 골동품 등)에서 제외하고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모조 진주(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 ; 유리로 만든 것은 **제7018호** ; 왁스로 만든 것은 **제9602호**에 분류한다)
- (b) 진주 모패(母貝 : mother of pearl) : 가공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제0508호**) 또는 가공한 것(**제9601호**)

71.02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 - 선별하지 않은 것

- 공업용

7102.2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7102.29 -- 기타

-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7102.39 -- 기타

다이아몬드(diamond)는 탄소의 동소체(allotropic form)이며 결정질로서 순수한 상태에서 매우 높은 굴절률과 분산력을 갖는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것으로 알려진 광물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장식품이나 의장품을 제조할 때와 공업용[특히, 신선(伸線: wire drawing)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원석과 가공석[예: 절개한 것·톱질한 것·상호마찰에 의해 깎은 것·텀블링(tumbling)한 것·깎아낸 것·광택을 낸 것·구멍을 뚫은 것·조각(음각과 양각 포함)한 것·이중접합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세트로 하지도 않고 장착도 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하지 않는다**.

(a) 다이아몬드의 더스트(dust)와 가루(**제7105호**)

(b) 축음기 바늘용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가공 다이아몬드(**제8522호**)

(c) 제90류의 계기·측정 기기나 그 밖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가공 다이아몬드(**제90류**)



[소호해설]

소호 제7102.10호

“가공되지 않은(unworked)” 또는 원석의 다이아몬드는 “공업용(industrial)”이나 “비공업용(non-industrial)”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적 기준에 따라 등급화 되고 선별된다. 기술적 기준에는 중량(덩어리)과 커팅(cutting)할 때의 결정학상의 적합성을 포함하며 형태·투명도·색상과 결정체의 순도나 질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소호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은 수많은 다이아몬드의 무더기(즉, 꾸러미)나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이 소호는 또한 체로 친 후 크기에 따라 포장되었으나 그 이상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은 원석의 다이아몬드의 꾸러미를 포함한다.

소호 제7102.21호와 제7102.29호

이 소호는 다음과 같은 천연다이아몬드(natural diamond)를 분류한다.

(1) 엄격한 의미에서의 다이아몬드(diamonds proper) : 즉, 투명이나 반투명 다이아몬드라 불리며 이는 특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보통 신변장식용품이나 금·은 세공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흑다이아몬드와 그 밖의 다결정 다이아몬드-응결체(흑금강석을 포함한다)은 그 밖의 투명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
- (3) 엄격한 의미에서의 연마용(鍊磨用) 다이아몬드(bort proper) : 즉, 불투명 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는 보통 절단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 (4) 그들의 특성(색상·선명도나 품질·투명도 등)으로 인해 공업용[예: 드레서(dresser)·신선(伸線 : wire drawing)용 다이(die)나 다이아몬드 앤빌(diamond anvil)]으로 정밀하고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거나 또한 보석용으로도 적합한 다이아몬드

이러한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으로 공구[다이아몬드 절단공구·천공(穿孔 : boring)기 등]에 세팅하거나 기계 부품품이나 기계에 부착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7102.21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천연 상태의 다이아몬드, 즉, 이들은 모암으로부터의 침전물이나 추출물로 얻어지며 무더기(lots)나 꾸러미로 선별한다.
- (2) 단순히 톱질한 것(예: 얇은 스트립 모양으로)·쪼갠 것(자연적인 결정면의 층을 따라 쪼갠 것)·다듬은 것·텀블링한 것이나 단지 적은 수의 연마된 면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예: 보통 윈도우(window)라 불리며,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을 전문가가 감정할 수 있게끔 거의 만든 것]. 즉, 단지 일시적인 모양의 원석으로서 명백히 추가적 가공을 거쳐야 한다. 스트립 모양의 것은 원형·사각형·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절단될 수 있는데 모든 표면과 가장자리는 거칠고 광택이 나지 않고 연마를 하지 않아야 한다.
- (3) 광택처리 다이아몬드(tumbled diamond)로서 화학적 처리(화학적 연마라고도 알려져 있다)에 의해 표면이 광택이 있고 반짝이도록 한 것. 화학적 연마는 다이아몬드를 연마용 휠에 개별적으로 장착되어 연마제로 연마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 반응기에 - 대량으로 - 넣고 연마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다.
- (4) 잘게 부수거나 파쇄한 다이아몬드

제7102.29호는 광택을 내거나(polished) 구멍 뚫린(drilled) 다이아몬드와 조각된(engraved)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오직 확인 목적을 위해 조각된 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

소호 제7102.31호와 제7102.39호

이들 소호에는 천연 다이아몬드를 분류한다. 그들의 특유한 특성(색상·선명도나 순도·투명도 등)으로 인하여 신변장식용품 세공사나 금·은 세공사에 의하여 사용이 적합한 것이다.

제7102.31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

- (1) 천연 상태의 다이아몬드, 즉, 이들은 모암(母岩)으로부터의 침전물이나 추출물로 얻어지며 무더기(lots)나 꾸러미별로 선별된다.
- (2) 단순히 톱질한 것·쪼갠 것(자연적인 결정면의 층을 따라 쪼갠 것)·거칠게 다듬은 것이나 단지 적은 수의 연마된 면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예: 보통 윈도우(window)라 불리며,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을 전문가가 감정할 수 있게끔 거의 만든 것] : 즉, 단지 일시적인 모양으로 명백히 추가적 가공을 거쳐야 하는 것
- (3) 광택처리 다이아몬드(tumbled diamond)로서 화학적 처리(화학적 연마라고도 알려져 있다)에 의해 표면이 광택이 있고 반짝이도록 한 것. 화학적 연마는 다이아몬드를 연마용 휠에 개별적으로 장착되어 연마제로 연마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 반응기에 - 대량으로 - 넣고 연마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다.

제7102.39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다수의 평평한 연마표면이나 연마 면이 있는 연마된 다이아몬드로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것

제14부
71.02

- (2) 구멍 뚫린(drilled) 다이아몬드 · 조각한(engraved) 다이아몬드(음각과 양각을 포함한다)와 이중접합이나 삼중접합으로 가공한 다이아몬드
- (3) 운송이나 저장 과정에 깨진 연마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연마 · 천공(穿孔 : drilling)이나 조각 과정에 깨진 다이아몬드

제7102.39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단지 적은 수의 연마된 면(예: 원석의 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을 전문가가 감정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도우)을 갖고 있으며 명백히 추가 가공을 거쳐야 하는 다이아몬드 ;
- (b) 오직 확인 목적을 위해 조각된 다이아몬드

71.03 -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3.10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7103.99 -- 기타

이들 귀석과 반귀석은 보통 결정체로서 색깔·광채·변질하지 않는 속성과 때로는 희소성으로 인해 장식품이나 의장품의 제조용으로 신변장식품 제공자나 금·은세공자에 의해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단단한 성질과 그 밖의 특성으로 인해 시계나 공구나 그 밖의 산업목적 등에 사용한다(예: 루비·사파이어·마노·압전기용 석영 등).

제7102호에 관한 해설 2번째 절에 있는 규정이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석(stone)을 **제외한다**(장착되었는지와 세트인지에 **상관없다**).

(a) 축음기 바늘용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가공 사파이어(**제8522호**)

(b) **제90류나 제91류**의 계기·측정기기·시계·그 밖의 물품의 부분품과 ; 석영제 광학소자(**제9001호나 제9002호**)

그러므로 이 호의 석(stone)은 주로 신변장식품이나 금·은 세공품에 장착이나 세트용으로 사용하며 ; 그러나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제8201호부터 제8206호까지에 분류하는 도구나 제16부 기계류(예: 고주파 기기용의 압전기용 석영 등)에 장착할 석도 이 호에 포함한다.

물품으로 바뀐 석(stone)은 **제외하는데**, 예를 들면, 마노로 만든 모르타르(mortar)와 페스틀(pestle)·마노로 만든 십자가와 링·석류석으로 만든 배(杯)와 컵·옥(비적)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잡화 장신구·마노나 얼룩 마노로 만든 재떨이와 문진·낙숫대용의 링 등이 있으며 ;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7116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석은 수송의 편의상 실에 꿰어질 수도 있는데 조립 방법이 일시적이어야 하고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아야 하며, 신변장식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세트로 되고 장착된 귀석이나 반귀석은 그 밖의 호에 포함하지 **않는 한**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113호·제7114호·제7116호**(관련 해설 참조)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부속서에 기재한 귀석이나 반귀석(상업적 명칭이 주어진 광물학상의 명칭)을 포함하며 ; 이 호에는 물론 신변장식품 등에 사용이 적합한 물질의 석(stone)과 변종에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특정의 석(stone)으로서 앞에 기재된 광물의 중에 속하지만 비(非)귀석 변종이거나 신변장식용품·금 세공품·은 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품질의 것은 **제25류·제26류나 제68류**에 분류한다.
- (b) 동석(가공하지 않은 것은 **제2526호** ; 가공한 것은 **제6802호**)
- (c) 흑옥(가공하지 않은 것은 **제2530호** ; 가공한 것은 **제9602호**)
- (d) 유리로 만든 모조 귀석이나 모조 반귀석(**제7018호**)



[소호해설]

소호 제7103.10호

이 소호에는 튼질(예: 얇은 스트립 모양으로), 쪼개기(자연적인 결정면의 층을 따라 쪼갠 것)나 브루팅(bruting)을 통해 거칠게 가공한 원석, 즉, 단지 일시적인 형상만을 가진 것으로서 명백히 추가적 가공을 거쳐야 하는 원석을 분류한다. 스트립(strip) 모양의 것은 원형·사각형·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절단될 수 있는데, 모든 표면과 가장자리는 거칠고 광택이 나지 않고 연마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 제7103.91호와 제7103.99호

제7103.91호와 제7103.99호에는 연마(polished)하거나 구멍 뚫은(drilled) 석·조각한(engraved) 석(음각과 양각을 포함한다)과 이중접합이나 삼중접합으로 가공한 석을 분류한다.

71.04 -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썬 것, 장착되거나 세트에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4.10 - 압전기용 석영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7104.21 -- 다이아몬드

7104.29 -- 다이아몬드

- 기타

7104.91 -- 다이아몬드

7104.99 -- 기타

이 호의 석은 이전 두 개호의 천연귀석이나 반귀석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A)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 : 화학적으로 제조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말한다.

- 천연석(예: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공업용 다이아몬드·압전기용 석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화학적 조성 및 결정 구조를 가진 물품
- 천연석과 동일한 화학적 조성 및 결정 구조를 가지지는 않더라도, 색상·밝기·내식성(耐蝕性)·경도(硬度)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금·은 세공업자가 천연석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예: 천연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사용하는 이트륨 알루미늄 가넷(YAG)·큐빅지르코니아(CZ)·합성 모이사나이트]

루비나 사파이어와 같은 몇몇 합성석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은 원통형이나 배(梨: pear) 모양의 방울 형태일 수 있으며 “보울(boule)”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보통 길이 방향으로 쪼개지거나 디스크(disc) 모양으로 절단한다.

고압고온공법(HPHT)으로 생산된 몇몇 합성 다이아몬드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특한 깎인 육팔면체 형태를 나타내는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바닥에서 시드 결정(seed crystal)의 원래 위치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화학기상증착방법(CVD)을 사용하여 생산된 합성 다이아몬드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은 형태가 대부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이며 보통은 결정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없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HPHT와 CVD 이외의 방법으로도 생산할 수 있다.

(B) **재생한 귀석과 재생한 반귀석**은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천연귀석·반귀석의 조각(주로 가루)을 응집·가압·용융(溶融: fusing)[보통 취관(blow pipe)을 사용한다]하는 등의 인공적인 방법으로 얻는다.

합성석과 재생석은 보통 현미경 시험(공기이외의 매체 하에서 더 효과적이다)으로 작은 기포나 무늬결을 볼 수 있어 천연석과 구별할 수 있다.

제7102호와 제7103호의 해설, 특히 가공 상태에 관한 해설은 이 호에도 준용한다.

합성석이나 재생석을 제7018호의 유리로 만든 모조 귀석이나 모조 반귀석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제7018호** 해설 참조).



[소호해설]

소호 제7104.10호

압전기석영(piezo-electric quartz)은 기계적 압력을 받을 경우 전하(電荷)를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 전하의 강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반대로 압전기석영이 받는 전위차(電位差)를 기계적 압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압전기석영은 다목적으로 전기기기산업에 사용한다. 마이크로폰·확성기·초음파송수신기·고정주파수발진기 등의 제조용

이 소호에 해당되는 압전기석영은 보통 얇은 시트(sheet)·플레이트(plate)·봉(rod) 등의 형태인데, 이것은 합성석영을 전기적 축의 선을 따라서 정밀절단법으로 톱질하여 얻는다.

소호 제7104.21호

이 소호에는 합성 다이아몬드로서 단순히 톱질하거나, 쪼개거나(층의 자연적인 결정면을 따라 쪼갠 것), 원형으로 다듬거나, 적은 수의 연마된 면을 가진 것[즉, 일시적인 모양만을 가진 것으로 명백히 추가 가공을 거쳐야 하는 것]을 분류한다.

소호 제7104.29호

소호 제7103.10호에 대한 소호해설은 이 소호에도 준용한다.

소호 제7104.91호

이 소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여러 층의 평평한 연마된 면(surface or facet)을 가지는 연마된 합성 다이아몬드로서, 신변장식용품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 사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2) 합성 다이아몬드[구멍을 뚫거나 조각(음각(cameo)과 양각(intaglio)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 접합석(이중접합이나 삼중접합을 한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석(stone)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하나 이상의 합성 다이아몬드를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형성되는 것이다. 합성 다이아몬드(일반적으로 더 큰 하단 부분)와 천연 다이아몬드(일반적으로 더 작은 상단 부분)를 결합하여 생산된 합성/천연 이중접합 다이아몬드는 여기에 분류한다.

소호 제7104.99호

소호 제7103.91호와 제7103.99호의 소호해설은 이 소호에도 준용한다.

71.05 -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 다이아몬드의 것

7105.90 - 기타

이 호에는 앞 3개호에 속하는 석(stone)에서 얻는(예: 광택이나 연마) 더스트(dust)와 가루(powder)가 포함한다. 이러한 가루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와 석류석에서 얻어진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더스트와 가루는 주로 저급 다이아몬드(공업용등급의 다이아몬드알갱이)를 파쇄하여 얻는다. 합성 다이아몬드의 더스트와 가루는 일반적으로 고온과 고압 하에서 흑연을 직접 변환하여 제조한다.

이러한 더스트와 가루는 실용상 날개로 장착되기에는 너무 작다는 점에서 제7102호와 제7104호의 다이아몬드와 구별된다. 이들은 보통 연마용에 쓰이는 것이며 그 입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0 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를 초과하지 않는다. 크기는 개개의 입자에 대한 측정이 라기보다는 체로 걸러내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더스트와 가루 입자의 크기와 석의 크기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귀석이나 반귀석은 하나하나 세어서 수량을 결정하는데 반하여 더스트와 가루는 무게로 결정한다.

다이아몬드의 더스트와 가루는 연마·광택용 휠(polishing wheel)이나 호닝 휠(honing wheel)·절단기·폴리싱 페이스트(polishing paste)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석류석(garnet)의 가루는 주로 광학렌즈의 연마용이나 종이나 다른 재료의 기재 위에 부착하여 연마제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 가루는 **제외한다(제2818호)**.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제7106호 - 제7112호)

71.06 -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 가루
- 기타

7106.91 -- 가공하지 않은 것

7106.92 -- 반가공한 것

이 호에는 은이나 은합금(위의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금을 도금한 은[금박은(silver gilt)]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의 다양한 덩어리·반가공한 것이나 가루 모양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입힌 은은 **분류하지 않는다**.

*
* *

은은 백색금속으로 공기중에서는 부식되지는 않지만 광택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은은 최고의 열과 전기의 전도체이며, 금 다음으로 가장 가단성(可鍛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금속이다. 순은은 매우 연하여 종종 타 금속과 합금된다. 그러나 비합금의 순은은 전기 재료용[전기 접촉자(contact)·퓨즈(fuse) 등], 화학공업용·식품공업용·외과 의료용에 사용하는 특정의 기기, 그리고 금속 도금용으로 사용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위의 총설 참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 해당하는 **은 합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은-구리합금** :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화폐나 금·은 세공품의 제조에 사용하며 ; 또한 전기접촉자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
- (2) **은-구리-카드뮴합금, 은-구리-티타늄합금과 은-인듐합금** : 금·은 세공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 (3) **은-구리-아연 합금**[때로는 카드뮴, 주석이나 인(phosphorus)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 땀접용으로 사용한다.
- (4) **은-안티모니-주석-납합금, 은-구리-납합금, 은-카드뮴합금과 은-탈륨의 감마(減摩)합금(anti-friction alloy)**
- (5) **소결된 은-텅스텐합금, 은-몰리브덴, 은-니켈합금과 은-철합금** : 전기접촉자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 모양의 은이나 은합금을 포함한다.

- (I) **가루** : 여러 가지 기계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미세하게 분리된 가루의 형태가 보통이다. 가루는 야금(冶金 : metallurgy), 전기기기의 금속표면처리제와 전도성 결합체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물감·페인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예: 다른 착색제와 같이 만든 것이나 부착제나 용제 중에 액체 상태나 반죽같은 상태로 분산·조제된 것)으로 조제한 가루나 얇은 조각 모양을 **제외하며** ; 이들은 **제3206호·제3207호**[요업이나 유리공업에 사용되는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화합물]·**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나 제3213호**에 분류한다.

- (II) 덩어리 · 알갱이 · 잉곳(ingot) · 캐스트바(cast bar) · 펠릿(pellet) 등 가공하지 않은 은 ;
맥석으로부터 분리된 덩어리(lump) · 괴(nugget) · 결정체(crystal) 등의 자연 은(native silver)
- (III) 봉(bar · rod) · 형재(形材 : section) · 선(wire) · 판(plate) · 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해 제조하며 ; 스트립(strip)과 디스크(disc) 등은 은시트
(sheet silver)를 절단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이 호에는 섬유공업에 사용하는 은실(silver
thread)을 포함하는데, 이는 방적사가 아니거나 방직용 섬유사(제11부)로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극히 미세한 살균된 외과수술 봉합용의 은선(silver wire)은
제3006호에 분류한다.
- 이 호에는 은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금속-흑연질(metallo-graphitic)
의 블록(block) · 판(plate) · 봉(bar · rod) 등도 포함한다(제3801호 해설 참조).
- (IV) 관(tube · pipe)[코일 모양으로 감긴 관(管)을 포함]. 단 특정의 제품(예: 화학기기의
부분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V) 박(foil)(은도금용) : 보통은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의 시트(sheet)에서 분리한
얇은 은박판을 해머(hammer)로 두들기거나 쳐서 얻는다. 이러한 박은 대개 소책자 모양으로
조제되어 종이 · 플라스틱 등으로 된 후면에 붙이기도 한다.
- 그러나 젤라틴(gelatin) · 글루(glue)나 그 박의 부착제로 응고시킨 은가루로 된 것이나 종이, 플라스틱이나
다른 지지물 위에 은을 부착시킨 것으로 된 스탬핑박(stamping foil)[블로킹박(blocking foil)이라고도 한다]
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212호)**.
- (VI) 필(purl) · 스팅글(spangle)과 절편(cutting) : 필(purl)은 은선을 조그맣게 끈 것이며
자수나 트리밍(trimming)용으로 사용한다. 스팅글(spangle)과 잘라낸 조각(cutting)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기하학적 모양[원형 · 별(star)형 등]으로 잘라진 작은 조각으로서
보통 중앙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 제3절**에 해당되는 신변장식용품 등의 블랭크(blank) 형태로 주조 · 소결(燒結) · 스탬핑 · 압착하여 제조되는 것
[예를 들면, 세팅 · 반지블랭크(ring blank) · 배지(badge) · 꽃과 상(橡)]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71.07 -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금속을 박아 넣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을 포함한다]은 류의 주 제7호와 총설에 정의되어 있다.

주석·니켈과 아연의 합금과 특히 구리의 합금은 때때로 은이 입혀진다. 비합금 구리와 강(鋼 : steel)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입혀진다. 이러한 금속은 은 세공품(식탁용 식기 류·실내장식품 등)에, 그리고 화학공업이나 식품공업용의 도관·용관과 기기에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보통 봉(bar·rod)·형재(形材 : section)·선·판·시트·스트립·관(管)(tube·pipe)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7106호의 규정은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에도 준용한다.

71.08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 가루

7108.12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108.13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7108.20 - 화폐용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금과 금의 합금(위의 총설에서 정의되어 있다)이나 플래티늄(platinum)으로 도금된 금을 분류한다. 그러나 귀금속을 입힌 금은 **분류하지 않는다.**

*
* *

금은 특징 있는 황금색을 나타내며 ; 고온에서도 산화되지 않고, 산(酸)을 포함하는 대개의 시약에 대해 화학적 저항성을 갖는다[그러나 왕수(aqua regia)는 금을 부식한다]. 금은 은과 구리 다음으로 열과 전기에 있어 가장 좋은 전도체이며, 모든 금속 중에서 가단성(可鍛性)·연성(延性)이 가장 크다. 반면에 매우 유연하므로 전기도금용이나 전기침전용을 제외하고는 비합금(순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위의 총설 참조) 이 호에 열거하는 **금합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1) **금-은합금** : 구성하고 있는 합금 금속의 비율에 따라 황색·녹색·백색 등 여러가지 색상이 있다. 이들은 신변장식용품용, 전기접점용과 특수한 고용용점의 뿔접용으로 사용한다
- (2) **금-구리합금** : 주로 주화·신변장식용품이나 금 세공품이나 전기접점용으로 사용한다.
- (3) **금-은-구리합금** : 주로 신변장식용품·금 세공품에 사용하며 또한 치과용 합금이나 뿔접용 합금(solder)으로 사용한다. 이 합금은 아연과 카드뮴을 함유하기도 하며, 이 경우 뿔접으로 사용한다. 주로 은과 구리로 구성된 “doré”나 “bullion doré”으로 불리는 합금이 있는데 금의 함유량이 2% 이상의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합금은 특정의 구리를 함유한 황화철강이나 조동(粗銅)을 처리할 때 유도되는 잔유물에서 생산되는데 그 후 구성 금속을 분리하기 위하여 정련한다.
- (4) **금-구리-니켈 합금** : 간혹 추가로 아연과 마그네슘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합금 [“백색(white)”금으로 알려지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회색(grey)”금으로 알려져 있다]은 가끔 플래티늄의 대용물로서 사용한다. 따라서, 그 밖의 백금(white gold)으로서 팔라듐을 2% 이상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제7110호).**
- (5) **금-니켈합금** : 전기접점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은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은 모양을 갖는 금과 금합금을 포함한다. 따라서 제7106호의 해설규정을 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7108.20호

이 소호에는 국가·국제통화기관·수권은행 간에 교환되는 금을 분류한다.

71.09 -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금속을 박아 넣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을 포함한다]은 이 류의 주 제7호와 총설에 규정한다.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을 입힌 은은 보통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다(제7107호 해설 참조).

비금속(卑金屬)(예: 구리와 그 합금)이나 은은 신변장식용품(팔찌 · 시곗줄 · 귀걸이 등) · 시계 케이스 · 시가나 담배의 홀더 · 라이터(lighter) · 금 세공품 · 전기접촉자 · 화학기기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을 입힌다.

71.10 -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플라티늄(platinum)

7110.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7110.19 -- 기타

- 팔라듐(palladium)

7110.2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7110.29 -- 기타

- 로듐(rhodium)

7110.3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7110.39 -- 기타

-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7110.4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7110.49 -- 기타

제7106호(은)와 제7108호(금)에서와 같이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총설에서 규정한 백금(platinum)과 백금합금을 분류한다.

*
* *

“백금(platinum)”은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제71류의 주 제4호나목 참조].

(A) **플라티늄(platinum)** : 플라티늄은 회백색의 금속으로 유연하고 연성(延性)이 크다. 실온(室溫)에서 광택이 흐려지지 않으며, 왕수(aqua regia) 이외의 산(酸)에서 부식되지 않는다. 단조(鍛造: forging)·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해서 봉(bar)·판(sheet)·스트립(strip)·관(管)(tube)·선(線)과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으로 가공되어진다.

플라티늄과 그 합금은 강한 내식성(耐蝕性), 높은 녹는점과 탁월한 촉매작용이 있으므로 대부분 공업용의 중요한 용도에 쓰인다. 그 외에 신변장식용품 재료나 치과용 재료로서도 사용한다. 그 사용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전기공업에 있어서는 열전대(熱電對: thermocouple)와 저항 온도계의 제조, 여러 가지 기기의 전기접촉자와 전극으로 사용하며; 섬유공업에 있어서는 인조섬유 방사기의 방사노즐에 사용하며; 유리공업에 있어서는 유리 섬유 제조용의 부싱(bushing)·도가니·교반기와 같은 용융·유리용의 기구에 사용하며; 화학공업과 석유공업에서는 촉매[즉, 질산을 제조하는 경우의 암모니아 산화공정의 촉매, 플레트포밍(platforming)용 촉매]로서; 또 화학기구(예: 도가니)에 사용하며; 항공기 공업에서는 항공기용 내연기관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의 전극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의 점화장치로 사용한다.

플라티늄과 그 합금은 외과용 기구(특히, 피하주사바늘)의 제조, 가스라이터(gas lighter)·촉정기·광학기용의 헤어라인(hair line) 등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 (B) **팔라듐(palladium)** : 팔라듐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부드럽고 특히 연성(延性)이 있고 내식성(耐蝕性)이 강하며 잘 변색되지 않는다. 왕수와 질산에 용해되고 뜨거운 황산에 침식된다. 단조(鍛造 : forging)·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하여 봉(bar)·판(sheet)·스트립(strip)·관(管)·선(線)이나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으로 가공된다.

주로 전기접촉자·경납땜(brazing)합금·수소정제설비·수소화반응촉매·신변장식용품의 제조나 플라스틱에 귀금속의 도포(塗布 : coating)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간접층의 지판으로 사용한다.

- (C) **로듐(rhodium)** : 로듐은 은백색 연성(延性)을 가진 단단한 금속이다. 고도의 반사율의 특성과 플라티늄족 금속 중 가장 높은 전기와 열전도성을 갖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수용액[고온의 광산(鑛酸)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식성이 있다.

단조(鍛造 : forging)·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하여 봉(bar)·판(sheet)·스트립(strip)·관(管)·선(線)과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으로 가공된다.

주로 플라티늄의 합금금속으로 사용하며 또 합금의 상태로서 전기공업이나 유리제조공업에 있어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로듐(rhodium)은 그 낮은 전기저항과 강한 내식성에 따라 전착물(電着物) 형태로 전기접촉자나 내마모성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접촉면(예: slip ring)에 사용함이 적당하다. 촉매로서도 사용하고, 또한 은으로 만들었거나 은도금한 금속으로 만든 칼붙이와 깊은 용기의 내식성에 마무리 도금으로 사용한다.

- (D) **이리듐(iridium)** : 이리듐은 회백색의 단단한 금속으로 상온이나 고온의 산(왕수를 포함)에 침식되지 않는다.

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하여 얇은 스트립이나 선(線 : wire)을 제조할 수 있다.

이리듐은 열전대(thermocouple)용 합금·도가니용 합금이나 항공기 엔진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의 전극용 합금 성분으로 사용한다.

- (E) **오스뮴(osmium)** : 오스뮴은 이 호의 금속 중 가장 녹히기가 어려운 금속이다. 압분체(壓粉體 : compact) 상태에서는 아연과 유사한 청백색을 나타내고 내산성(耐酸性)이 있다. 미세한 가루 상태에서는 비정질의 흑색 가루이며, 질산과 왕수에 침식되며 대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酸化)된다.

펜촉과 회전축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경성(硬性)의 내식성 합금에 주로 사용하고, 또 촉매로서도 사용한다.

- (F) **루테튬(ruthenium)** : 루테튬은 회색의 부서지기 쉬운 단단한 금속이다. 강한 내식성이 있고 왕수에 침식되지 아니하나,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에는 서서히 침식된다. 판(sheet)·스트립(strip)이나 선(線)의 모양으로 소규모적으로 생산한다.

플라티늄(platinum)·팔라듐(palladium)·몰리브덴(molybdenum)·텅스텐(tungsten) 등에 첨가하는 합금으로 사용한다[예: 펜촉의 끝과 컴퍼스(compass)의 끝 제조에 사용한다]. 이는 촉매로도 사용하며 전착물(electrodeposited form)의 형태로 내마모성(耐磨耗性)이 중요성을 갖는 전기적 접점과 접촉면에도 사용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 포함되는 **플라티늄(platinum)**과 그 밖의 금속[금·은이나 비금속(卑金屬)]과의 **합금**에는 다음 것이 있다.

- (1) **플라티늄-로듐합금** : 열전대선(thermocouple wire) ; 노(爐 : furnace)의 권선 ; 유리공업용 장치의 부분품 ; 금강상의 촉매와 ; 방사기의 방사노즐
- (2) **플라티늄-이리듐합금** : 전기접촉자 ; 신변장식용품 ; 주사바늘
- (3) **플라티늄-루테튬합금** : 전기접촉자
- (4) **플라티늄-구리합금**(구리 5% 이하) : 신변장식용품
- (5) **플라티늄-텅스텐합금** : 진공관 전극용 선(wire) ; 접화용의 선
- (6) **플라티늄-코발트합금** : 영구 자석
- (7) **팔라듐-루테튬합금** : 신변장식용품
- (8) **팔라듐-은합금** : 경납땜(brazing)용 합금 ; 수소화산용 박막 ; 전기접촉자
- (9) **팔라듐-구리합금** : 전기접촉자 ; 경납땜(brazing)용 합금
- (10) **팔라듐-알루미늄합금** : 퓨즈 선(fuse wire)
- (11) **로듐-이리듐합금** : 열전대(thermocouple)
- (12) **이리듐-오스뮴합금** : 펜촉
- (13) **이리듐-텅스텐합금** : 고온용 스프링(spring)
- (14) **금-플라티늄합금** : 방사기의 방사노즐
- (15) **금-은-팔라듐-구리합금** : 신변장식용품 ; 전기접점용 스프링(spring)
- (16) **은-구리-팔라듐합금** : 경납땜(brazing)용 합금
- (17) **오스미리듐(osmiridium : iridosmine)** : 오스뮴·이리듐·루테튬과 플라티늄을 함유하는 자연합금 ; 이는 오스뮴(osmium)의 주요 원료이다.

71.11 -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 위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에 대한 정의는 류의 주 제7호과 총설을 참조한다. 이들은 보통 제7107호의 은에 대한 해설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예: 구리·텅스텐(tungsten)], 백금을 입힌 은이나 백금을 입힌 금은 주로 신변장식용품과 전기기기에 사용한다.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3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 기타

7112.91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7112.92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7112.99 -- 기타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재생하거나 화학품 제조의 기본 재료**에만 적합한** 금속형태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로서 사진용 필름·인쇄 회로판 등의 조각으로부터 발생한 것

(B) 화폐주조·금 세공품·은 세공품·신변장식용품 등의 작업장에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을 기계 가공하는 동안 생긴 웨이스트(waste)와 잔유물[예를 들면, 성형(shaping)·천공(穿孔 : drilling)·가공 등에서 생기는 스위핑(sweepings)·가루·줄밥·대패밥 등]

(C) 식탁용품·금 세공품·은 세공품·촉매(거즈 모양의 것) 등과 같은 제품의 낱거나 깨진 조각으로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스크랩(scrap). 이러한 스크랩이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수리나 수선을 하였던지에 상관없다)이나 귀금속의 재생공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D) 금속 모양과 화합물의 모양으로 귀금속을 함유한 사진플레이트·필름·종이·판지와 방직용 섬유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할로젠화은)

(E) 야금(冶金)·전해나 화학적 처리에서 생기는 잔유물로서 귀금속을 함유한 것[예: 전해정제나 전기도금에서 생기는 찌꺼기(slag·sludge), 사진의 정착 배스(fixing bath)에서 생기는 은 잔유물]

이 호에서는 귀금속(예: 금이나 은)을 함유한 전자 회로기판과 이와 유사한 캐리어(carrier)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외한다(제8549호)**.

제3절

신변장식용품, 금 세공품·은 세공품과
그 밖의 제품

(제7113호 - 제7118호)

71.13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규정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

(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gem-set)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brooch)·귀걸이·넥체인(neck chain)·시계와 그 밖의 장식용 체인(chain) ; 회중시곶줄·펜던트(pendant)·타이핀(tie-pins)과 클립(clips)·커프링크(cuff-link)·의복장식용 단추·단추 등 ; 종교용이나 그 밖의 십자가 ; 메달과 휘장 ; 모자 장식핀[핀(pin)·버클(buckle)·링(ring) 등] ; 핸드백용 장식핀 ; 벨트(belt)나 구두 등의 버클(buckle)과 슬라이드(slide) ; 머리집게·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tiara)·의복용 빗과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핀 등

(B)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 예를 들면, 시가(cigar)나 쉐어케이스(cigarette)·코담배박스(snuff box)·안경케이스(spectacle case)·분갑(powder box)·입술연지통(lipstick holder)·포켓용 빗(pocket comb)·구중제갑(cachou box)·체인지갑(chain purse)·목주(rosary)·열쇠용 링 등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드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금속을 박은 것도 포함한다)을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되어야 하며 ; [따라서 금이나 은으로 간단한 문자를 넣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 담배갑은 비금속(卑金屬)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따라서** 진주(천연·양식이나 모조의 것)·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모조 귀석·귀갑의 부분품·진주양식을 위한 모패(母貝)·상아(ivory)·호박(천연이나 응집된 것)·흑옥이나 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나 불완전한 제품과 그 부분품[단, 이 경우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을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예: 반지나 브로치 등의 결합용 모티프(motif)]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42류의 주 제3호나목의 **제4202호나 제4203호**의 물품
- (b) **제4303호나 제4304호**의 물품(모피나 인조모피의 제품)
- (c) 이 류의 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한 **제64류나 제65류**의 신발류와 모자류와 그 밖의 물품
- (d)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 (e) 주화(신변장식용품으로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제7118호나 제97류**)
- (f) **제90류**의 물품(예: 안경·쌍안경과 그 부착물)
- (g) 시계팔찌와 손목시계팔찌(**제91류**)
- (h) **제96류**의 물품(**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의 물품이나 **제9615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펜대·펜슬홀더·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라이터·흡연용 파이프·시가갑이나 담배갑과 이들의 부분품; 향수용 분무기·그 밖의 분무기(화장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와 그의 머리부분
- (ij)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신변장식용품(**제9706호**)

71.14 -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한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제7113호의 신변장식용품보다 크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식탁용품(article of tableware)** : 예를 들어, 식탁용 칼·카빙세트(carving set)·스푼·포크; 국자; 고기용 집게; 쟁반·접시·수프나 채소용 접시와 사발; 소스 그릇; 과일용 쟁반; 설탕그릇·커피 끓이는 주전자·찰주전자·차나 커피용 컵; 반침달린 잔; 달걀용 컵·디칸터(decanter)·리큐어 서비스용품(liqueur service); 빵·케이크·과실 등의 스탠드와 바스켓; 생선용 접시; 케이크용 쟁반; 와인을 냉각시키는데 쓰이는 양동이; 양념병; 각설탕 집게; 나이프 레스트(knife rest)·냅킨 링(serviette ring); 테이블용 벨; 장식용 마개 등
- (B) **화장용품(toilet article)** : 예를 들어, 손거울·병과 분첩(제7113호의 것을 제외한다); 솔 넣는 통·옷솔·손톱용 솔·머리솔·빗(제7113호의 의복용 빗과 포켓용 빗은 제외한다); 향아리 등 향수용 분무기는 제외한다(제9616호)
- (C) **사무용품(office or desk equipment)** : 예를 들어, 잉크병·잉크 스탠드·북엔드·문진·종이용 칼 등
- (D) **흡연용구(smokers' requisite)** : 예를 들어, 시가나 담배용 박스·담배용 병·재떨이·성냥갑 홀더 등; 단, 제9613호나 제9614호의 물품(담배용과 그 밖의 라이터·흡연용 파이프·시가렛홀더)은 제외한다.
- (E) **그 밖의 가정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 : 예를 들어, 흉상·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실내 장식용의 상(像); 보석상자; 테이블 중앙 장식품·화병·장식용 화분; 그림액자; 램프·가지장식이 달린 촛대·촛대·샹들리에; 벽난로의 장식용의 접시와 쟁반·메달과 메달리언(개인장식품의 것은 제외한다); 운동용 트로피; 향수 버너 등
- (F) **종교용품(article for religious use)** : 예를 들어, 성골함(reliquary)·성배(chalice)·성합(ciborium)·성체 현시대(monstrance)·십자고상(crucifix)·촛대·램프

이 호는 또한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의 **완성되지 않은 물품이나 불완전 물품**과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의 주요 **부분**을 포함한다. 예: 식기류의 은 손잡이, 화장용 브러시의 은으로 만든 뒷면 등

이 호의 물품은 **반드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함유(신변장식용품에서와 같이 **그 함유량이 아주 소량으로 포함된 경우의 유보조항이 적용된다**)하여야 하며; 진주(천연·양식이나 모조의 것),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모조석·귀갑·진주 모패(母貝: mother of pearl)·상아(ivory)·호박(천연이나 응결한 것) 흑옥이나 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제14부
71.14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이 류의 재료로 된 부착물을 가진 **제6601호**나 **제6602호**의 우산류·보행용 지팡이와 그 밖의 물품 뿐만 아니라 이 류의 재료를 전부나 일부 사용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부착물과 부속품 (**제6603호**)
- (b) **제90류**의 물품(예: 쌍안경·망원경)
- (c) 시계와 그 케이스(**제91류**)
- (d) 악기(**제92류**)
- (e) **제93류**의 무기와 그 부분품(허리에 휴대하는 무기·피스톨·리볼버 등)
- (f) 향수용 분무기·그 밖의 분무기(화장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와 그의 머리부분(**제9616호**)
- (g)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제9703호**), **제9705호**의 수집품과 **제9706호**의 골동품

71.15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5.90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이나 주 제3호의 규정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서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신변장식용품,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한 물품이나 불완전한 물품이나 그 부분품(**제7113호**) 또는 금·은 세공품, 금·은 세공품의 미완성한 물품이나 불완전한 물품이나 그 부분품(**제7114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예:

- (a)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단지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물품
- (b)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와 치과용 충전재와 그 밖의 물품
- (c) **제5809호**의 직물과 **제11부**의 그 밖의 물품
- (d) **제16부**의 기계·기계기구·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예: 백금으로 만든 섬유방사노즐(spinneret)·감마용 베어링·화학공업 기계나 산업용 기계의 부분품·전기접촉자]
- (e) **제90류**의 물품[예: 금·은·백색의 의족·의치와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 골절용 판·의료와 외과용기기·귀금속으로 만든 열전대(thermocouple)를 가진 고온계; 실험실용기구와 장치와 그 부분품]; **제91류**의 물품(시계류)이나 **제96류**의 물품(예: 플라티늄 스펀지로 된 가스 라이터)

그러므로 이 호에는 대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물품으로 국한한다. 예를 들면, 도가니·큐펠(cupel)·약주걱[예: 플라티늄(platinum)이나 플라티늄족(platinum group)의 금속의 것]; 촉매 등으로 사용하는 백금이나 백금합금으로 만든 클로스(cloth)망과 그릴(grill) 모양인 것; 기계장치나 열량기구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용기(안을 입히지 않았든가 열절연이 되게끔 하였는가 하는 것에 상관없다); 전기도금용의 금 양극은 알맞은 크기로 자른 순금의 판에서 전해통에 장치하기 위해 쇠갈고리를 낄 수 있게끔 양쪽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전기도금용의 은양극은 앞에서 설명한 금양극과 같은 형태의 것이나 횡단면을 “dog-bone”의 모양으로 압출하여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모양도 있다. 전기도금용의 플라티늄(platinum) 양극은 보통 전해통에 매달기 위해 세폭의 플라티늄(platinum) 스트립으로 용접한 소형의 물결 모양 상태로 된 플라티늄의 판이나 스트립(strip)으로 되어 있거나 같은 목적으로 플라티늄(platinum)선의 조각(piece)나 플라티늄 거즈로 된 세폭의 스트립(strip)을 고착시킨 플라티늄선 거즈(platinum wire gauze)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예: 핸드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부착물이나 장식용품으로서 진주·귀석·반귀석·귀갑 등을 결합할 수 있다.

71.16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7116.2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모든 제품[이 류의 주 제2호나목과 주 제3호에서 **제외한** 물품이 **아닌 것**]을 분류한다. 단,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아주 소량이 함유된 것은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2호나목 참조].

이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개인용 장식품과 그 밖의 장식을 한 물품**[예: 핸드백용 클라스포(clasp)와 프레임; 빗·브러시; 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의복용 단추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비금속(卑金屬)(귀금속으로 도금되었는지에 상관없다)·상아(ivory)·나무·플라스틱 등에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세트나 부착한 것

크기·품질·명암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신변장식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물품으로 구성된 진주(pearl)나 석(stone)을 포함한다. 그러나 금속이나 다른 재료로 세팅되었거나 피팅(fittings)된 것이 아닌 것으로 수송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실에 꿰기만 한 것으로서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이나 등급을 매긴 진주와 등급을 매기지 않은 석은 **제외하며**; 이들 제품은 **제7101호·제7103호·제7104호**에 분류한다(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해설 참조).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아주 소량[예: 금으로 만든 파스너(fastener)로 된 진주목걸이]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적지 않게 함유된 물품[금으로 만든 클립(clip)이 있는 귀걸이]은 **포함되지 않는다(제7113호)**.

(B) 전부나 일부가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구성된 **그 밖의 물품**;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반지[마노(agate)로 만든 것이 자주 있다]·팔찌(손목시계 팔찌는 제외한다)·받침달린 잔과 컵(석류석으로 만든 것이 가끔 있다); 작은 조각상과 장식용품(예: 비취로 만든 것); 모르타르(mortar)와 페스틀(pestle)(예: 마노로 만든 것); 계측기기용의 마노로 만든 것이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칼 가장자리나 베어링(bearing); 마노로 만든 실(絲)방적용 가이드; 머리부분을 마노로 만든 장식용 마개; 마노로 만든 광택 내는 공구(금도금용, 가죽·종이 등의 연마용); 마노로 만든 낚싯대용 링·종이용 칼·잉크 스탠드(ink-stand)·문진·재떨이(예: 마노로 만든 것이나 얼룩 마노로 만든 것)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작용하는 부분을 비금속(卑金屬), 금속산화물이나 시멘트로 만든 지지물 위에 붙여 놓은 것(조립이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예: 부착된 유리 베는 다이아몬드)

(b) **제16부**의 기계, 기계용구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 류의 주 제3호차목 참조].

(c) **제90류**의 물품(기계장치에 부착되는데 적합한 석영으로 만든 광학소자로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d)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시계의 부분품이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등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으로 쓰이는 가공된 귀석이나 반귀석(**제91류**의 주 제4호 참조)

71.17 - 모조 신변장식용품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7117.19 -- 기타

7117.90 - 기타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를 제외한다)·목걸이·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 등, 그러나 **제9606호**의 단추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제9615호**의 의복용 빗, 헤어슬라이드(hair-slide)나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도 제외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도금한 것이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예: 모노그램(monogram)·림(rim)와 페룰(ferrule))]이거나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모조 신변장식용품(귀걸이·팔찌·목걸이 등)의 완성되지 못한 물품이나 불완전한 물품을 포함한다.

(a) 보통 뒤틀리거나 표면가공된 것으로 때로는 추가가공 없이 귀걸이로 사용하는 양극 산화된 알루미늄선(aluminium wire)으로 구성된 스플릿링의 반제품[가공하지 않은 클라스트(clasp)로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b)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스트립(strip)을 조그만 고리로 조립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motif)(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속에 넣어 휴대하거나 신변에 사용하는 종류의 개인용품, 즉, 제7113호 해설(B)항에 열거된 품목(담배갑·분박스 등)은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이 류의 주 제3호에 열거된 물품

(b) **제8308호**의 물품[버클·버클 걸쇠(buckle clasps)·걸쇠(clasps)·훅(hooks)·아이릿(eyelets) 등]

71.18 - 주화(+)

7118.1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7118.90 - 기타

이 호에는 법정통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 관리하에서 발행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으로 발행된 주화류를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법정통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의 탁송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제시용 케이스에 일반 판매용으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를 포함하나 수집품은 **제외한다(제9705호 해설 참조)**.

주화(coin)는 금속의 판(sheet)으로 된 블랭크(blank)를 스탬핑(stamping)하여 만들어지는데 ; 이는 적합한 다이(die)로 양면에 도안이 동시에 새겨지도록 “찍는다(struck)”.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메달(주화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새겨진”(struck)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이 물품은 **제7113호 · 제7114호나 제7117호나 제8306호**(해당 해설 참조)에 해당된다.
- (b) 브로치(brooch) · 타이핀(tie-pin)이나 그 밖의 개인용 장식품에 부착된 주화류(**제7113호나 제7117호**)
- (c) 단지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으로서만 쓸모가 있는 깨졌거나 잘라졌거나 부서진 주화류



[소호해설]

소호 제7118.10호

이 소호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법정통화였으나 유통이 정지된 주화
- (2)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기 위해 주조된 주화 ; 이들 주화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소관관청에 의해 법정통화로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
* *

부 속 서

제7103호에 분류하는 귀석이나 반귀석의 목록

광석		거래품명			
Amblygonite	앰블리고나이트		Amblygonite	앰블리고나이트	
			Montebrasite	몬테브라사이트	
Amphiboles(group of)	암필볼(그룹)				
Actinolite	액티놀라이트	양기석(陽起石)	Actinolite, Nephrite, Jade	액티놀라이트, 네프라이트, 제이드	양기석(陽起石), 연옥(軟玉), 옥(玉)
Tremolite	트레몰라이트	투각섬석 (透角閃石)	Tremolite	트레몰라이트	투각섬석(透角閃石)
Rhodonite	로도나이트	장미휘석 (薔薇輝石)	Rhodonite	로도나이트	장미휘석(薔薇輝石)
Andalusite	안달루사이트	홍주석(紅柱石)	Andalusite	안달루사이트	홍주석(紅柱石)
Apatite	아파타이트		Chialstolite	키아스톨라이트	
Aragonite	아라고나이트		Apatite(all colours)	아파타이트(모든 색)	
			Aragonite, Ammolite	아라고나이트, 암모라이트	
Axinite	아씨나이트		Axinite	아씨나이트	
Azurite	애주라이트	남동석(藍銅石)	Azurite(Chessylite)	애주라이트 (캐시라이트)	남동석(藍銅石)
			Azurite-Malachite	애주라이트- 말러카이트	공작석(孔雀石)
Benitoite	베니토아이트		Benitoite	베니토아이트	
Beryl	베릴	녹주석(綠柱石)	Emerald	에메랄드	취옥(翠玉)
			Aquamarine	아과마린	남옥(藍玉)
			Colourless	무색	녹주석(綠柱石)(무색)
			Beryl-Goshenite	베릴-고세나이트	
			Yellow Beryl	옐로우 베릴	녹주석(綠柱石)(황색)
			Pink Beryl-Morganite	핑크 베릴-모거나이트	녹주석(綠柱石)(분홍)
			Heliodor	헬리오도르	
			Golden Beryl	골든 베릴	녹주석(綠柱石)(황색)
			Green Beryl	그린 베릴	녹주석(綠柱石)(녹색)
			Red Beryl, Bixbite	레드 베릴, 베스바이트	녹주석(綠柱石)(홍색)
Beryllonite	베릴로나이트		Beryllonite	베릴로나이트	
Brazilianite	브라질리아나이트		Brazilianite	브라질리아나이트	
Calcite	칼사이트	방해석(方解石)	Calcite	칼사이트	방해석(方解石)
Cassiterite	커시터라이트	석석(錫石)	Cassiterite	커시터라이트	석석(錫石)
Cerussite	시러사이트		Cerussite	시러사이트	
Chrysoberyl	크리소베릴	금록석(金綠石)	Chrysoberyl	크리소베릴	금록석(金綠石)
			Chrysoberyl Cat's-eye	크리소베릴 캐츠아이	금록석(金綠石) 묘안석(貓眼石)
			Alexandrite	알렉산드라이트	금록석(金綠石)
			Alexandrite Cat's-eye	알렉산드라이트 캐츠아이	금록석(金綠石), 묘안석(貓眼石)
Chrysocolla	크리소콜라	규공작석 (珉孔雀石)	Chrysocolla	크리소콜라	규공작석(珉孔雀石)
Cordierite	코디어라이트		Cordierite	코디어라이트	
			Iolite	아이올라이트	근청석(瑾靑石)
Corundum	커런덤	강옥(鋼玉)	Ruby	루비	홍옥(紅玉)
			Star-Ruby	스타-루비	성채 홍옥(星彩紅玉)
			Sapphire	사파이어	청옥(靑玉)
			Star-Sapphire	스타-사파이어	성채청옥(星彩靑玉)
			Sapphire Cat's-eye	사파이어 캐츠아이	청옥(靑玉) 묘안석(貓眼石)
			Sapphire or Corundum with colour designation	사파이어커런덤 (조색 디자인한 것)	청옥(靑玉) 강옥(鋼玉)
			Padparadschah (orange)	파파라차(오렌지)	
			Black Star-Sapphire, etc.	블랙 스타- 사파이어, 등	흑성채 청옥 (黑星彩靑玉)

제14부
71-부속서

광석			거래품명		
Danburite	댄버라이트		Danburite	댄버라이트	
Datolite	데이톨라이트		Datolite	데이톨라이트	
Diaspore	다이어스포어		Diaspore	다이어스포어	
Dumortierite	뒤모르티에라이트		Dumortierite	뒤모르티에라이트	
Epidote	에피도트	녹염석(綠簾石)	Epidote	에피도트	녹염석(綠簾石)
Euclase	유클레이즈		Euclase	유클레이즈	
Feldspar(group of)	펠드스파(그룹)	장석(長石)			
Albite	알바이트		Albite	알바이트	
			Maw-sit-sit/ Jadeite Albite	마우-잇-잇/ 제다이트 알바이트	
			Labradorite	래브라도라이트	조회장석(曹灰長石)
			Labradorite, Spectrolite	래브라도라이트, 스펙트로라이트	
Microcline	마이크로클라인	미사장석 (微斜長石)	Amazonite, Microcline	아마조나이트, 마이크로클라인	천하석(天河石) 미사장석(微斜長石)
Oligoclase	올리고클레이스		Aventurine Feldspar	어벤츄린 펠드스파	
			Sunstone	문스톤	일장석(日長石)
Orthoclase	오소클레이스		Orthoclase(yellow)	오소클레이스 (옐로우)	
			Moonstone	문스톤	월장석(月長石)
Fluorite (Fluorspar)	플루오라이트 (플루오르스파)	형석(螢石)	Fluorite (Fluorspar)	플루오라이트 (플루오르스파)	형석(螢石)
Garnet(group of)	가닛(그룹)	석류석(石榴石)			
Almandine	알만딘	귀석류석 (貴石榴石)	Garnet, Almandine	가닛, 알만딘	귀석류석 (貴石榴石)
			Garnet, Rhodolite	가닛, 로돌라이트	석류석(石榴石) (장미 빛)
Andradite	안드라다이트	취석류석 (翠石榴石)	Garnet, Andradite	가닛, 안드라다이트	취석류석 (翠石榴石)
			Garnet, Demantoid	가닛, 데만토이드	
			Garnet, Melanite	가닛, 멜라니트	
Grossular	그라슬라	녹석류석 (綠石榴石)	Garnet, Grossular	가닛, 그라슬라	녹석류석 (綠石榴石)
			varied colours	(각종 색)	
			Garnet, Grossular Chrome	가닛, 그로슬라 크롬	
			Tsavorite	차보라이트	
			Garnet, Hessonite	가닛, 헤소나이트	석류석(石榴石) (녹색)
Pyrope	파이로프	홍석류석 (紅石榴石)	Garnet, Pyrope	가닛, 파이로프	홍석류석 (紅石榴石)
Spessartite	스페사르타이트	망간석류석	Garnet, Spessartite	가닛, 스페사르타 이트	석류석(石榴石) (망간석류석 오렌지색)
Hematite	헤마타이트	적철석 (赤鐵石)	Hematite	헤마타이트	적철석(赤鐵石)
Idocrase	아이도크레이즈		Idocrase	아이도크레이즈	
			Vesuvianite	베수비아나이트	
			Californite	캘리포나이트	
Kornerupine	코르네루핀		Kornerupine	코르네루핀	
Kyanite	카이나나이트	남정석(藍晶石)	Kyanite	카이나나이트	남정석(藍晶石)
Lazurite	라주라이트		Lazurite	라주라이트	
			Lapis-lazuli	라피스-라줄리	청금석(靑金石)
			Lapis	라피스	
Lazulite	라줄라이트		Lazulite	라줄라이트	
Malachite	말라카이트	공작석 (孔雀石)	Malachite	말라카이트	공작석(孔雀石)
Marcasite	마커사이트	백철석 (白鐵石)	Marcasite	마커사이트	백철석(白鐵石)
Obsidian (volcanic glass)	옵시디언 (볼카닉글라스)	흑요석 (黑曜石)	Obsidian	옵시디언	흑요석(黑曜石)
Olivine	올리빈		Peridot	페리도트	감람석(橄欖石)

제14부
71-부속서

광석			거래품명		
Rhodochrosite	로도크로사이트	능망간석 (菱망간석)	Rhodochrosite	로도크로사이트	능망간석(菱망간석)
Scapolite	스카폴라이트	주석(柱石)	Scapolite	스카폴라이트	주석(柱石)
Serpentine	서펜틴	사문석(蛇紋石)	Bowenite	보웨나이트	
			Serpentine	서펜틴	사문석(蛇紋石)
			Verd Antique	베르드 안티코	
			Williamsite	윌리암사이트	
Sinhalite	신할라이트		Sinhalite	신할라이트	
Sodalite	소달라이트	방해석(方解石)	Sodalite	소달라이트	방해석(方解石)
Smithsonite	스미스소나이트	능아연석 (菱亞鉛石)	Smithsonite, Bonamite	스미스소나이트, 보나마이트	능아연석(菱亞鉛石)
Sphalerite	스펠러라이트	섬아연석 (閃亞鉛石)	Sphalerite Blende	스펠러라이트 블랜드	섬아연석(閃亞鉛石)
Spinel	스피넬	첨정석(尖晶石)	Spinel(all colours)	스피넬(모든 색)	첨정석(尖晶石)
			Pleonaste Black	프레오나스트 블랙	
			Spinel	스피넬	
Sphene(Titanite)	스핀 (티타나이트)		Sphene	스핀	
Topaz	토파즈	황옥(黃玉)	Topaz(all colours)	토파즈(모든 색)	황옥(黃玉)
Tourmaline	투어멀린	전기석 (電氣石)	Tourmaline(all colours)	투어멀린(모든 색)	전기석(電氣石)
			Anchroite	앵크로이트	
			Dravite	드라바이트	
			Indigolite	인디골라이트	
			Rubellite	루벨라이트	
			Tourmaline	투어멀린	묘안 전기석 (猫眼 電氣石)
			Cat's-eye	캐츠아이	
Tugtupite	턱투파이트		Tugtupite	턱투파이트	
Turquoise	터콰이즈	터키석	Turquoise	터콰이즈	터키석
			Turquoise Matrix	터콰이즈 매트릭스	
Variscite	바리사이트		Variscite	바리사이트	
Verdite	버다이트		Verdite	버다이트	
Vesuvianite (see Idocrase)	베수비아나이트 (Idocrase 참조)				
Zircon	지르콘		Zircon(all colours)	지르콘(모든 색)	
Zoisite	조이사이트	유렴석 (黝簾石)	Zoisite(all colours)	조이사이트 (모든 색)	유렴석(黝簾石)
			Tanzanite	탄자나이트	유렴석(黝簾石) (자주석)
			Thulite	툴라이트	유렴석(黝簾石) (적색)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조제페인트·잉크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flake)나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3207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
- 나. 페로세륨(ferro-cerium)이나 그 밖의 발화성 합금(제3606호)
- 다.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 라. 제6603호의 산류(傘類)의 프레임과 그 밖의 물품
- 마.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모조 신변장식용품]
-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 사.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그 밖의 물품(차량·선박·항공기)
- 아.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을 포함한다)
-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6호)이나 제19부의 그 밖의 물품(무기·총포탄)
-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그 밖의 물품
-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

3.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몰리브덴·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을 포함한다.
5.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2류와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 나.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
- 다.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
6. 이 표의 비금속(卑金屬)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라 해당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
- 가. 철과 강(鋼)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 나. 합금은 주 제5호에 따라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제8113호의 서멧(cermet)은 단일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본다.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1) 모든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
- 나. 가루
-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9.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봉
-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그러나 제74류의 와이어바(wire-bar)와 빌릿(billet)으로서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으로 제조할 때 단순히 기계에 투입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한 것은 제7403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 이 규정은 제81류에 해당하는 물품에도 준용한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나 형조(形造)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는 호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을 낸 것·연마한 것이나 도포한 것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총설

이 부에서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을 분류한다. 이 부에 분류하지 않는 비금속(卑金屬)의 물품 목록은 본 해설의 끝부분에 다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부에는 맥석(脈石 : gangue)으로부터 분리된 천연 상태의 금속과 구리 매트(matte), 니켈매트나 코발트매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아직 맥석 상태의 금속광과 천연금속을 **제외한다(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

이 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이 표에 있어서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wolfram)]·몰리브덴·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콜럼븀)·레늄과 탈륨을 말한다.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각 류는 개개의 덩어리 모양의 비금속(卑金屬)과 봉(bars·rods)·선(線)·판(sheets)과 같은 이들 비금속(卑金屬)물품과 그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조성 금속의 성질에 관계없이 **제82류, 제83류**(이들 류에 분류하는 것은 특정 제품에 **한정한다**)에 분류하는 특정의 비금속(卑金屬)의 제품은 **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의 합금

이 부의 주 제6호에 따라 문맥상 별도의 규정(예: 합금강의 경우에 있어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나 이 표의 다른 곳에서 정하고 있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에는 그 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제82류나 제83류 또는 다른 곳에서 정하고 있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에는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분류하는 합금도 포함한다.

제71류의 주 제5호와 이 부의 주 제5호에 따라 비금속(卑金屬) 합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귀금속을 함유하는 비금속(卑金屬) 합금

금속(은, 금과 백금) 중 어느 하나도 합금의 중량비로 2% 미만인 경우에는 이들 합금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분류한다. 귀금속을 함유한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합금은 제71류에 분류한다.

(2) 비금속(卑金屬) 합금

이들 합금은 중량비로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하나, 다만, 합금철(ferro-alloy)(제7202호 해설 참조)와 구리의 모합금(母合金 : master alloy)(제7405호 해설 참조)은 **제외한다**.

(3)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비(非)금속(non-metal)이나 제2805호의 금속과의 합금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계 총중량이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다른 원소의 합계 총중량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 합금을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합금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합금은 일반적으로 **제3824호**에 분류한다.

(4) **금속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물품과 용융(溶融 : melting)에 의해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과 금속간 화합물**

금속가루의 화합물을 소결(燒結)한 물품, 용융(溶融)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은 합금으로 취급한다. 후자의 혼합물에는 특히 금속 스크랩(scrap)을 용해하여 제조한 잉곳(ingot)으로서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금속 가루의 혼합물로서 소결(燒結 : sinter)하지 않은 것은 이 부의 주 제7호에 따라 분류한다(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조한 물품-아래 (B)항 참조).

두 가지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으로 이루어진 금속간 화합물도 합금으로 취급된다. 금속간 화합물과 합금과의 기본적인 상이점은 금속간 화합물의 결정격자 중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것에 반하여, 합금에 있어서는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B) 비금속(卑金屬)의 제품

부의 주 제7호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재료로 한 제품은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금속보다 **가장 많은** 금속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단, 해당 류의 각 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예: 구리로 만든 머리 부분을 가진 철강으로 만든 못은 구리가 주요 구성재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7415호에 분류한다). 또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에 의하여 비금속(卑金屬)이 그들에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비금속(非金屬)재료를 사용한 **물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함유금속의 성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여러 가지의 철과 강(鋼 : steel)은 동일금속으로 간주한다.
- (2) 합금은 그 합금을 분류하는 해당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예: 낫쇠로 만든 부분품은 전부가 구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 (3) 제8113호의 서멧(cermet)은 단일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본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부의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디에이터(radiator)의 전용 볼트(bolt)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spring)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bolt)는 제7318호의 볼트(bolt)로 분류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

시계용 스프링은 이 부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외하고**, **제9114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부의 주 제1호에 열거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 물품을 또한 **제외한다**.

- (a) 비금속(卑金屬)의 아말감(amalgam)(**제2853호**)
 - (b) 비금속(卑金屬)의 콜로이드 상태의 부유물(colloidal suspension)(보통 **제3003호**나 **제3004호**)
 - (c) 치과용 시멘트(cement)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물(**제3006호**)
 - (d) 감광성의 사진용 금속판. 예를 들면, 사진제판용(**제3701호**)
 - (e) **제3707호**의 사진용 섬광재료
 - (f) 금속드리사(**제5605호**) ; 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종류의 금속실(metal thread)이나 금속드리사로 된 직물(**제5809호**)
 - (g) **제11부**에 설명된 금속사로 만든 자수나 그 밖의 물품
 - (h) 신발류 부분품(**제6406호**). 다만, 제64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특히 프로텍터(protector), 아이릿(eyelet), 훅(hook)과 버클(buckle)]은 **제외한다**.
 - (ij) 주화(**제7118호**)
 - (k) 일차전지·일차배터리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일차배터리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제8548호**)
 - (l)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제9603호**)
-

제 7 2 류

철 강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목·마목·바목은 이 표의 전체에 적용한다).

가. 선철(銑鐵)

“선철(銑鐵)”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하지 않은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열거한 하나 이상의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 간 100분의 6
- 인 100분의 3
- 규 소 100분의 8
-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

나.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이란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30 이하인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다. 합금철(ferro-alloy)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 간 100분의 30
- 인 100분의 3
- 규 소 100분의 8
-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강(鋼)

“강(鋼)”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재는 제외한다.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

마.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바. 그 밖의 합금강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알루미늄 100분의 0.3
 - 붕 소 100분의 0.0008
 - 크 로 뮴 100분의 0.3
 - 코 발 트 100분의 0.3
 - 구 리 100분의 0.4
 - 납 100분의 0.4
 - 망 간 100분의 1.65
 - 폴리브테늄 100분의 0.08
 - 니 켈 100분의 0.3
 - 니 오 붐 100분의 0.06
 - 규 소 100분의 0.6
 - 티 타 늬 100분의 0.05
 - 텅스텐(불프람) 100분의 0.3
 - 바 나 뒸 100분의 0.1
 - 지 르 코 늬 100분의 0.05
- 그 밖의 원소(황·인·탄소·질소는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사.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이란 잉곳(ingot) 모양[피더헤드(feeder-head)나 핫톱(hot top)이 없는 것]이나 피그(pig) 모양으로 거칠게 주조한 제품으로서 표면에 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합금철(ferro-alloy)의 화학적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 알갱이

“알갱이”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미만이고, 메시(mesh) 구경이 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자. 반제품

“반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熱間)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일차 열간(熱間)압연공정이나 단조(鍛造)에 따른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중공(中空)이 없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형강(形鋼)의 블랭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들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

차. **평판압연제품**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카.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이란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제품으로서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불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불록아크형이고,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이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다.

타. **그 밖의 봉**

“그 밖의 봉”이란 자목·차목·카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불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불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

파. **형강(形鋼)**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나 제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 **선(線)**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 **중공(中空)드릴봉**

“중공(中空)드릴봉”이란 어느 횡단면에도 중공(中空)이 있는 봉으로서 드릴용에 적합하고, 횡단면 외측의 최대치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나 52밀리미터 이하인 것이며,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 최대치수의 2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철강의 중공(中空)봉은 제7304호로 분류한다.

2. 성분이 다른 철금속을 입힌 철금속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전해법·압착주조법·소결법으로 제조된 철강제품은 그 형태·구성·외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열간(熱間) 압연제품에 해당하는 이 류의 각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선철(alloy pig iron)**

“합금선철(alloy pig iron)”이란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선철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0.2
- 구 리 100분의 0.3
- 니 켈 100분의 0.3
- 알루미늄·몰리브데늄·티타늄·텅스텐(월프럼)·바나듐 중 어느 하나의 원소 100분의 0.1

나. **비합금쾌삭강(non-alloy free-cutting steel)**

“비합금쾌삭강(non-alloy free-cutting steel)”이란 다음에 열거한 중량비의 원소를 하나 이상 함유한 것을 말한다.

- 황 100분의 0.08 이상
- 납 100분의 0.1 이상
- 셀레늄 100분의 0.05초과
- 텔루륨 100분의 0.01초과
- 비스무트 100분의 0.05초과

다.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이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 합금강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고속도강(high speed steel)”이란 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나 몰리브데늄·텅스텐·바나듐의 세 가지 원소 중 적어도 두 가지 원소를 합한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이고, 탄소가 100분의 0.6 이상이며, 크로뮴(chromium)이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마. **실리코망간강(silico manganese steel)**

“실리코망간강(silico manganese steel)”이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인 합금강을 말한다.

- 탄소 100분의 0.7 이하

- 망간 100분의 0.5 이상 100분의 1.9 이하
- 규소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2.3 이하.

그러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제7202호의 소호에서 합금철(ferro-alloy)의 분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합금원소 중의 한 원소만이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금철(ferro-alloy)을 이원합금으로 보아 해당 소호에(해당 소호가 있는 경우) 분류하고, 위의 규정의 유추해석에 따라 두 가지나 세 가지의 합금원소가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삼원합금이나 사원합금으로 취급한다.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원소”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함유량이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

총설

이 류에는 철금속, 즉, 선철(銑鐵 : pig iron) ·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 합금철과 그 밖의 일차제품(제1절), 철이나 비합금강의 철강공업제품[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 모양의 제품 · 반제품과 이들로부터 직접 생산한 주요 제품](제2절), 스테인리스강의 제품(제3절)과 그 밖의 합금강의 제품(제4절)을 분류한다.

주조, 단조품 등의 한층 더 가공된 제품, 널말뚝(sheet piling), 용접된 형강(形鋼), 철도선로 건설재료와 관(管)은 제73류에 분류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류에 분류한다.

철강공업에 있어서 원료로 제2601호 해설서에 실린 여러 가지의 천연 철광석(산화물 · 수산화물 · 탄산염), 황철광배소재(pyrites cinder : 황철광 · 백철광 · 자황철광 등으로부터 유황을 태워 제거한 후에 잔류하는 소결된 산화철)과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사용한다.

(I) 철광석의 전환(환원)

철광석은 용광로나 전기로 내에서 환원에 의하여 선철(銑鐵 : pig iron)로 전환되거나, 여러 가지 직접 환원 공정에 의하여 해면 모양(해면철)이나 럼프(lump) 모양으로 전환되며, 다만, 특정 용도(예: 화학공업에서)로 요구되는 고순도의 철만은 전기분해나 그 밖의 화학적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이다.

(A) 용광로 공정에 의한 철광석의 전환

철광석에서 얻는 대부분의 철은 용광로 공정에 의하여 추출된다. 이 공정은 원료로 주로 광석을 사용하나,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사전 환원된 철광석과 그 밖의 철 웨이스트(ferrous waste)가 또한 원료로 사용하여 질 수 있다.

용광로 환원제는 주로 경(硬)코크스(hard coke)로 구성되며, 때로는 소량의 석탄이나 액체 상태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혼합시킨다.

그렇게 하여 얻는 철은 용융(溶融 : molten) 상태의 선철(銑鐵)이며, 부산물에는 광재(鑛滓 : slag) · 용광로 가스와 용광로 광진이 있다.

이와 같이 제조한 용융 선철(溶融銑鐵 : molten pig iron)의 대부분은 제강 공장에서 강(鋼 : steel)으로 직접 변환된다.

용융선철(溶融銑鐵)의 일부는 잉곳(ingot) 주형, 주철관 등의 제조용으로 주물 공장(제철소)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주조기나 샌드베드(sand-bed)로 금속덩어리 형태나 블록 형태로 주조하거나 ; 흔히 “판철(plate iron)”로 알려진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lump) 형태로 제조되며, 물속에 넣어서 알갱이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

고체 상태의 선철(銑鐵 : pig iron)은 강(鋼 : steel)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련소에서 철 스크랩과 함께 채용해되거나 제철소·용선로나 전기로에서 철 스크랩(ferrous scrap)와 함께 용해되어 주조품으로 변환된다.

(B) 직접 환원 공장에서의 철광석의 전환

전술한 공정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환원제가 보통 가스 상태나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이거나 석탄이므로, 경(硬)코크스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들 공정에서, 환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산되는 제품[일반적으로 해면철(sponge iron)로 알려져 있다]은 용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스펀지(sponge)형태·사전 환원된 펠릿(pellet)이나 덩어리(lump) 모양으로 산출된다. 이런 이유로 그들 탄소의 함유량은 보통 용광로 선철(용해금속이 탄소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의 탄소 함유량보다 낮다. 대부분의 이들 조제품은 제강소에서 용해되고 강(鋼 : steel)으로 전환된다.

(II) 강(鋼)의 제조

용융(溶融 : molten)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인 선철(銑鐵)이나 주철(cast iron)과 직접 환원에 의하여 얻는 철제품(해면철)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함께, 기본적인 제강 재료가 된다. 이들 재료에는 생석회·형석·탈산제(예: 페로망간·페로규소·알루미늄)와 같은 재형성 첨가물과 여러 가지의 합금 원소가 추가된다.

제강 공정에는 2개의 주요 공정, 즉, 용융선철(溶融銑鐵 : molten pig iron)을 전로나 공기 취입에 의하여 정련하는 “압축공기식(pneumatic)”공정과 평로나 전기로에 의하는 노상(爐上)공정이 있다.

압축공기식 공정은 외부의 열원이 필요하지 않는다. 전로 투입물이 주로 용융선철(溶融銑鐵 : molten pig iron)로 구성된 경우에 이 공정이 이용된다. 선철(銑鐵 : pig iron)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예: 탄소, 인, 규소와 망간)의 산화(酸化)는 액상의 강(鋼)을 유지하거나 부가된 스크랩(scrap)을 채용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열을 발생시킨다. 이 공정에서는 순수한 산소가 용융(溶融) 금속에 취입되는 제강공정(Linz-Donawitz공정 : LD나 LDAC, OBM, OLP, Kaldo와 그 밖의 공정)과 지금은 안 쓰는 것이지만 공기나 때로는 농축된 산소를 이용하는 제강 공정(Thomas공정과 Bessemer공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평로법(open-hearth)에 의한 제련공정은 외부 열원을 필요로 한다. 고체 상태의 노(爐 : furnace) 투입물[예: 철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해면철과 고체 상태의 선철(銑鐵)]이 원료가 될 경우에 이 공정이 이용된다.

이러한 제련에 있어서 2개의 주요 공정은 중유(heavy oil)나 가스에 의해서 열이 공급되는 마르틴 로(Martin furnace) 공정과 전기에 의해서 열이 공급되는 아크 로(arc furnace) 공정이나 유도 로(induction furnace) 공정이 있다.

제강을 함에 있어서, 2개의 다른 제강 공정을 연속해서 이용하기도 한다(이연식 공정). 예를 들면, 마르틴 로(Martin furnace)에서 정련이 시작되어 전기로에서 종결되거나 ; 전기로에서 용융(溶融 : melting)된 강(鋼 : steel)이 특수 전로에 이송되어져 그곳에서 산소와 아르곤을 노(爐)투입물에 투입함으로써 탈탄(decarburisation)이 완성되어진다(이 공정은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강을 제조할 때 사용한다).

많은 새로운 공법이 특수 구조강이나 특수한 성질의 강(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발전해 왔다. 이들 공정에는 진공 상태에서의 전기 아크(arc)식 용융(溶融), 전기충격에 의한 용융(溶融)과 일렉트로슬랙(electroslag) 공정을 포함한다. 이들 모든 공정에서 강(鋼)은 자체 소모 전극으로 녹아 수냉식 잉곳(ingot) 주형에 떨어져 들어가서 제조한다. 주형은 단일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체화된 주물을 밑에서 빼낼 수 있도록 밑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다.

위의 공정에 의하여 얻은 액체 상태의 강(鋼 : steel)은 그 이상의 정련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수용레이들(receiving ladle)로 흘러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의 합금 원소나 탈산제(脫酸劑)가 추가되어진다. 이것은 가스 상태의 불순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진공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다.

모든 이들 각 공정에서 제조되는 강(鋼 : steel)은 합금 원소의 함유량에 따라 “비합금강”과 “합금강”(스테인리스나 그 밖의 것)으로 구분된다. 그들은 그 강(鋼)의 특성에 따라 예를 들면, 쾌삭강(快削鋼),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 고속도강(high speed steel)이나 규소망간강으로 구분된다.

(III)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과 반제품의 제조

용융(溶融 : molten) 상태의 강(鋼)이 주형(강 주조물)에 의해 최종 형태로 주조되기는 하나(주물공정에서), 대부분의 용융(溶融)상태의 강(鋼)은 잉곳(ingot) 몰드에 주입되어 잉곳(ingot)으로 주조된다.

주조나 주입단계와 응고 단계에서 강(鋼)은 리밍(rimming)(또는 effervescent)강, 진정(또는 “non-effervescent”)강, 반진정(또는 “balanced”)강의 3개 주요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리밍(rimming) 상태에서 주조하거나 주입되는 강(鋼)은 주입공정 중이나 주입공정 후에 “effervescent”상태의 강(鋼)속에 용해된 산화철과 탄소 사이에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다. 냉각 과정에서 불순물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잉곳(ingot)의 상반부에 모인다. 이들 불순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층은 잉곳으로부터 얻어진 압연 제품의 표면 외양을 더욱 좋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경제성이 높은 종류의 강(鋼 : steel)은 냉간(冷間) 디싱(cold dishing)용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강(鋼)은 “effervescent”상태에서 만족하게 주조될 수 없다. 이는 특히 합금강과 고탄소강의 경우 사용한다. 이 경우, 강(鋼 : steel)은 진정(killed : 즉, 탈산)되어야 한다. 탈산(脫酸)은 부분적으로 진공처리방법에 의하고 있으나 보통 규소, 알루미늄, 칼슘이나 망간 등과 같은 원소를 첨가하여 성취된다. 이렇게 하여 남은 불순물은 잉곳(ingot)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좋은 품질[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鋼 : steel)의 성질이 강덩어리 전체에 동일해야 할 것이다]을 보장해 준다.

일부의 강(鋼)은 부분적으로 탈산되기도 하는데, 반진정(semi-killed)[또는 혼합(balanced)]강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鋼 : steel)이 고체화되고 온도가 평형 상태가 된 후에, 잉곳(ingot)은 일차 분괴압연기나 조(粗)압연기(blooming, slabbing 등) 위에서 반제품[블룸(bloom)·빌릿(billet)·라운드(round)·슬래브(slab)·시트바(sheet bar)]으로 압연되거나 드롭해머(drop hammer : 낙하추)나 포징프레스(forging press : 단압기)로 반가공 단조물로 전환된다.

연속 주조기에 의하여 반제품의 형태로 직접 주조되는 강(鋼)의 양이 증가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횡단면의 모양이 완제품의 모양과 유사한 것도 있다. 연속주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반제품은 이들의 외부 표면 모양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데 이것은 보통 다소 짧은 일정 거리에서 보면 서로 다른 색깔의 횡단 고리 모양을 보여주며, 또한 절단된 횡단면의 외양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지는데 이것은 급속 냉각의 결과로 방사형의 결정체 모양을 보여 준다. 연속 주조강은 항상 진정강(killed steel)으로 된다.

(IV) 완제품의 생산

반제품[어떤 경우에는 잉곳(ingot)]은 바로 뒤이어 완제품으로 변환되어진다.

완제품은 보통 **평판제품**["wide flats", "universal plate", "wide coil", 시트(sheet), 판(plate)과 스트립(strip)]과 **길쭉한 제품**[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긴 코일 모양의 봉(bar·rod)·그 밖의 봉(bar·rod)·형강(形鋼: section)과 선(線)]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품은 잉곳(ingot)이나 반제품으로부터 직접 열처리[열간(熱間) 압연·단조(鍛造: forging)나 열간인발(熱間引拔)]하거나, 열간(熱間)처리된 제품을 냉간(冷間) 처리[냉간(冷間) 압연, 압출, 인발(引拔), 광휘인발(引拔)]해서 소성 변형에 의하여 제조되고, 어떤 경우에는 뒤따른 마무리 작업[예: 무중심 연삭이나 정밀 연삭에 의하여 제조한 냉간(冷間) 처리된 봉]에 의하여 제조한다.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 전해 침전, 가압주조(electrolytic deposition)나 소결(燒結)에 의하여 만든 철강 제품은 그 형태, 그 조성과 외양에 따라 유사한 열간(熱間) 압연제품에 적합한 이 류의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1) 가압주조[다이 캐스팅(die casting)]

이 공정은 용융(溶融) 상태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의 합금을 다소 높은 압력으로 주형에 주입하는 공정이다.

이와 같은 공정은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규격의 정밀도를 보장한다.

(2) 소결(燒結)

이것은 아주 조밀한 가루를 주형 제조[보통 프레스링(pressing)으로 결합시킨다]해서 특수로에서 연속 가열하는 가루 야금(冶金)술이다.

소결(燒結)된 재료에 최종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이 처리 과정은 특별한 온도·시간과 기압 조건 하에서 행해지며 고체 모양의 응결제품을 만들어낸다. 또한 소결(燒結) 공정은 진공상태에서 행해진다.

(A) 열간(熱間) 소성변형

- (1) **열간(熱間) 압연**이란 급속 재결정점과 용융을 시작하는 점 사이의 온도에서 행하는 압연(rolling)을 의미한다. 이 경우의 온도의 범위는 강(鋼)의 조성물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르게 된다. 대체로 열간(熱間) 압연 중인 가공물의 최종 온도는 약 섭씨 900℃이다.

- (2) **단조(鍛造 : forging)**란 어떤 모양의 조각을 얻기 위하여 해머(hammer)나 단조(鍛造 : forging) 프레스(press)기를 이용하여 덩어리 상태의 금속을 열간(熱間)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 (3) **열간인발(熱間引拔)**에 있어서는 강(鋼)을 가열시켜서 금형에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모양의 봉(bar)·관(管)이나 형재가 만들어 진다.
- (4) **열간(熱間) 드롭단조(鍛造 : forging)와 드롭스탬핑(drop stamping)** : 특수 공구에 의하여 금형[밀폐되었거나 버어 조인트(burr joint)를 갖춘 것] 속에 있는 절단된 블랭크(cut blank)에 열간 성형해서 금속으로 만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보통 컨베이어선 상에서). 충격과 압력에 의하여 행해지는 이 가공은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면에서 효과를 주며 롤링(rolling)·해머링(hammering)·수동단조(hand forging)이나 벤딩(bending)의 예비 압연작업이 수반된다.

(B) **냉간(冷間) 소성변형**

- (1) **냉간(冷間) 압연** : 상온, 즉, 재결정온도 이하에서 압연작업이 행해진다.
- (2) **냉간(冷間) 드롭단조(鍛造)와 드롭스탬핑(drop stamping)** : 앞에서 설명한 A(4)에서 설명된 방법과 유사한 냉간(冷間) 공정에 의하여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3) **압출** : 요구되는 모양을 얻기 위하여 재료가 통과하는 면 이외의 모든 면이 밀봉되어 공간 상태인 금형과 압착 공구 사이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덩어리 상태의 강(鋼)을 변형하기 위한 냉간가공 공정이다.
- (4) **선인발(線引拔)** : 불규칙하게 감긴 코일 상태의 봉(bar·rod)으로부터 가느다란 코일 선을 얻기 위하여 고속으로 하나 이상의 금형(다이)을 통과하면서 연신되는 냉간(冷間) 공정을 말한다.
- (5) **광휘인발(引拔)** : 봉을 소형 물품이나 다른 모양을 얻기 위하여 불규칙적으로 감긴 코일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의 금형을 통과하면서 연신(비교적 저속으로)되는 냉간(冷間)공정을 말한다.

냉간(冷間) 가공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은 다음 기준들에 의하여 열간(熱間) 압연이나 열간인발(熱間引拔) 제품과 구별된다.

- 냉간(冷間) 가공품의 표면은 열간(熱間)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외양보다 좋은 외양을 가지며 스케일층(layer of scale)을 갖지 않으며 ;
- 치수의 오차(tolerance)는 냉간(冷間)가공품의 경우 경미하며 ;
- 얇은 평판제품[얇은 “와이드 코일(wide coil)”·시트(sheet)·판(plate)과 스트립(strip)]은 보통 냉간환원(cold-reduction)에 의하여 제조하며 ;
- 냉간(冷間) 가공제품을 현미경으로 검사해 보면 결 모양이 변형되어 나타나고 결 방향은 작업 방향과 평행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열간(熱間)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제품은 재결정으로 인해 거의 규칙적인 결이 보이게 된다.

이 이외에 냉간(冷間) 가공품은 열간(熱間) 압연이나 열간인발(熱間引拔) 제품과 공유하는 다음의 성질을 갖는다.

- (a) 그들 물품이 받은 스트레인경화(strain hardening)나 가공경화(work hardening) 때문에 냉간(冷間) 가공제품은 열처리로 약간 이들 성질이 감소되기는 하나 매우 단단할 뿐 아니라 큰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를 갖고 있다.

- (b) 파열할 때의 신장도(elongation)는 냉간(冷間) 가공품의 경우 아주 낮으나 ; 적합한 열처리를 받은 제품은 비교적 높다.

두께의 현저한 감소가 없이 열간(熱間) 압연 평판제품에 응용되는 아주 가벼운 냉간(冷間) 압연공정[스킨패스(skin pass)나 핀치패스(pinch pass)라고 알려져 있다]은 열간(熱間)압연가공품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낮은 압력하에서의 콜드패스(cold pass)가 제품의 표면에만 한하여 행하여지는데 반해 진정한 의미의 냉간(冷間) 압연[냉간(冷間) 환원으로 알려져 있다]은 가공품의 횡단면을 상당히 수축시킴으로써 그 결정구조를 변화시킨다.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완성 제품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업에 의하여 보다 나은 완성 처리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다른 물품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다.

- (1) 기계가공[즉, 선삭(旋削 : turning) · 밀링(milling) · 분쇄(grinding) · 천공(穿孔 : perforation) · 펀칭(punching) · 폴딩(folding) · 사이징(sizing) · 필링(peeling) 등]. 그러나, 조잡한 선삭(旋削 : turning)은 산화스케일(oxidation scale)과 크러스트(crust)를 제거할 뿐이며, 조잡한 트리밍(trimming)은 분류상 변화를 주는 마무리작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 처리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a)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燒鈍 : annealing) · 경화(硬化) · 소려(燒戻 : tempering) · 표면경화 · 질화(nitriding)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
 - (b) 금속의 열처리 중에 형성된 산화스케일(oxide scale)과 크러스트(crust)를 제거하기 위한 스케일링 제거(descaling), 피클링(pickling), 스크레이핑(scraping)과 그 밖의 공정
 - (c) 단지 부식이나 그 밖의 산화(酸化)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塗裝), 운송 중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 예를 들면, 활성부식방지 안료[연단(鉛丹) · 아연 가루 · 산화아연 · 크로뮴화아연(zinc chromate) · 산화철 · 미늄철 · 보석세공인의 철단(鐵丹)]를 함유한 페인트와 오일 · 그리스(grease) · 왁스 · 파라핀왁스(paraffin wax) · 흑연(graphite) · 타르[또는 역청(bitumen)]을 주제로 한 비안료성 도장(塗裝)
 - (d) 표면완성처리에 포함되는 것 ;
 - (i) 연마 · 광택처리나 유사한 처리 ;
 - (ii) 인공산화(산화용액에의 침전과 같은 여러 가지 화학공정에 의하여) · 녹청처리완성, 청열착색[블루 어닐링(blue annealing)] · 브라우닝(browning)이나 브론징(bronzing)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한) : 이는 외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품표면 위에 산화 피막을 형성한다. 이들 처리는 부식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며 ;

(iii) 다음과 같은 화학표면처리 :

- 인산염 피복법 : 금속성 인산염 용액, 특히 망간 용액·철 용액과 아연 용액에 제품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 이 공정은 파아커라이징(parkerising)이나 본더 라이징(bonderising)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처리 기간이나 증탕기(bath)의 온도에 의존한 것이고 ;
- 옥살레이팅(oxalating)·보레이팅(borating) 등 : 적절한 염(salt)과 산(酸)으로 인산염 피복법의 처리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며 ;
- 크로뮴산이나 크로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용액에 물품을 침지하는 크로매팅처리(chromating) ; 이 방법은 표면처리용이다(예: 아연으로 도금이나 도포한 철강).

이들 화학 표면처리는 처리되는 제품의 사후 냉간(冷間) 변형, 페인트의 도포나 그 밖의 비금속 보호의 도장을 용이하게 하는 편익을 가진다.

(iv) 금속도장(메탈리제이션 : metallisation)의 주요공정은 다음과 같다 :

- 용융(溶融) 금속이나 금속 합금의 용액조 침전 : 예를 들면, 아연 용액이나 주석 용액에 열간(熱間) 침지시키는 것·납으로 열간(熱間) 도장하는 것과 알루미늄으로 도장하는 것 ;
- 전기도금[금속 염류(鹽類)의 적정 용액을 전기분해에 의해 도금되는 금속물 위에 도금할 금속을 음극 침전] : 예를 들면, 전기도금에는 아연·카드뮴(cadmium)·주석·납·크로뮴(chromium)·크로뮴(chromium)/크로메이트(chromate)·구리·니켈(nickel)·금이나 은 ;
- 도포할 제품을 가열해서 가루 상태의 필요한 도장용 금속으로 주입이나 살포하는 것 : 예를 들면, 아연 피복(아연 부착법)·알루미늄(aluminium) 피복(알루미늄 부착법), 크로마이징(chromising)[크로뮴(chromium)의 살포] ;
- 분사[용융(溶融) 상태의 도장용 금속을 도장할 금속 제품 위에 분사를 하는 것] : 예를 들면, 스크프공정(Schoop process), 가스피스톨(gas pistol), 아크(arc), 플라즈마(plasma)와 정전기식 분사 공정 ;
- 진공 등의 상태에서 도장(塗裝)용 금속을 증착해서 금속화하는 것 ;
- 발광 방전상태에서 도장용 금속을 이온으로 충격을 주어 금속화하는 것(이온도금) ;
- 음극 증발에 의한 도장(증착)

(v) 비(非)금속(non-metallic)성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enameling)·바니싱(vernishing)·래커칠(lacquering)·페인트칠(painting)·표면인쇄(surface printing)·세라믹(ceramic)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방사선 방사에 의하여 수반되는 정전 용액조(靜電溶液槽 : electrostatic fluidised bath) 속에서 발광 방전·전기영동(泳動 : electrophoresis)·정전식의 투사와 침지 등과 같은 특수공정을 포함한다]

- (e) 피복처리(cladding) : 즉, 접촉면의 분자 침투에 의하여 서로 다른 색깔이나 성질을 갖는 금속층을 조합하는 것. 이러한 한정된 확산(limited diffusion)이 피복 제품의 특성이며 전향에서 열거한 방법(예: 보통의 전기도금방법)으로 금속화한 제품과는 구별된다.

여러 가지의 피복 공정에는 압연할 때 수반해서 기초 금속에 용융(溶融 : molten) 클래딩금속을 주입하는 방법 ; 기초금속이 효과적인 용액이 되도록 피복 속을 단순 열간(熱間) 압연방법 ; 용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기계적인 공정이나 열처리 공정을 할 때 수반해서 피복 금속을 퇴적하거나 적층하는 그 밖의 방법(예: 전기 피복)을 포함한다. 피복 공정 중에 피복 금속[니켈(nickel) · 크로뮴(chromium) 등]은 전기도금에 의해 기초 금속에 부착된다. 그때, 접촉면의 분자 침투는 이후의 냉간(冷間 : cold) 압연과 함께, 적당한 온도에서의 열처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비철금속(非鐵金屬 : non-ferrous metal)으로 피복한 철제품은 철강의 중량이 제일 많은 **경우에 한하여** 제72류의 관련호에 분류한다(제15부의 주 7 참조). 다른 철금속으로 피복한 철강제품, 즉, 본래 제품의 구성비율이나 피복 금속의 구성 비율에 따라 두 개의 절(제2절 · 제3절이나 제4절)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중량비로 제일 많이 함유하는 금속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된 비합금 보통강의 봉(bar)은 강(鋼)의 금속중량이 제일 많으면 제2절에 분류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절에 분류한다.

- (f) 시험용으로 금속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 (g) 적층(lamination) : 예를 들면, 점탄성(粘彈性 : viscoelastic) 물질로 된 중간층 위에 금속층을 겹쳐 놓는 것[중간층은, 예를 들면, 소리 등의 격리층(insulator)의 기능을 한다]

*
* *

철금속의 합금과 복합제품(composite article)에 관한 분류는 제15부 총설에 설명되어 있다.

제1절
일차재료와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제품
(제7201호 - 제7205호)

총설

이 절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철강 야금(metallurgy)의 일차재료[철광석의 직접 환원에 의하여 얻는 선철(銑鐵 : pig iron) ·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 합금철(ferro-alloy) ·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철 제품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재 용해용 스크랩 잉곳(ingot)]와 순도가 중량비로 최저 99.94% 이상인 철(제7201호부터 제7204호까지)
- (2) 선철(銑鐵 : pig iro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과 철강의 알갱이 모양과 가루 모양(제7205호)

72.01 -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 · 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2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01.50 -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A) 선철(銑鐵 : pig iron)

선철(銑鐵)은 이 류의 주 제1호가목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탄소를 2%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크로뮴강(chromium steel)은 이 류의 주 제1호라목을 적용하여 제4절의 그 밖의 합금강과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

선철(銑鐵)은 철강산업의 주요 일차 제품으로 주로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환원시키거나 용해 시킴으로써 제조되거나, 철 웨이스트(ferrous waste)와 스크랩(scrap)을 전기로나 용광로에서 용해시켜 만든다. 선철(銑鐵)은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 구성되었지만, 규소 · 망간 · 황이나 인과 같은 다른 원소도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철광석 · 스크랩(scrap) · 용제(融劑 : flux)나 연료에서 과생한다. 그리고 선철(銑鐵)은 크로뮴(chromium)과 니켈(nickel)과 같은 다른 원소도 포함하는데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첨가된다.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않은(crude) 선철(銑鐵)과, 편의상이나 일정한 정도까지의 정제 · 혼합이나 합금 상태를 만들기 위해 재용해된(remelted) 선철(銑鐵)을 포함한다. 이 경우, 금속의 조성비율이 주 제1호가목에 열거된 규정의 **범위 내여야 한다**. 선철(銑鐵)의 형태는 피그(pig) · 블록(block) · 럼프(lump)(깨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용융(溶融)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호는 성형이나 가공한 제품[예: 거칠거나 완성된 주물(casting)이나 관(tube)]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선철(銑鐵)은 깨어지기 쉽고 가공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 이러한 특성은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약간 강(鋼 : steel)의 성질을 부여하는 소둔(燒鈍 : annealing) 방법에 의하여 얼마간은 제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가단주철(可鍛鑄鐵 : malleable cast iron)[백심(白心 : whiteheart)가단주철(cast iron)이나 흑심(blackheart)가단주철(cast iron)]”이라 부르고 있다. 실제로 이 처리 방법은 다른 호에 분류하는 주조 제품에 일반적으로 응용되는 것이지만, 피그(pig)·블록(block) 등의 일차 모양의 재료는 탄소의 함유 중량이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해당된다.

합금선철(alloy pig iron)은 소호주 제1호가목에 언급된 하나나 그 이상의 원소가 중량비로 그 주에 열거된 비율로 함유하는 선철을 말한다.

(B)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은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물품은 때로는 상거래 관습상 합금철(ferro-alloy)과 같이 취급되나, 일반적으로 철광석에서 직접 제조됨으로 선철(銑鐵)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

이는 주로 강(鋼 : steel) 제조에 있어서 철을 탈산(脫酸)하고 재가탄(再加炭 : recarburise)하기 위해 사용하며, 합금 제조용에 사용한다. 또한 높은 망간(manganese)의 함유량 때문에 부서진 표면은 광채를 보이고, 선철(銑鐵)과 같은 모양으로 제시한다.

72.02 - 합금철(ferro-alloy)

- 페로망간

7202.1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7202.19 -- 기타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7202.29 -- 기타

7202.3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7202.49 -- 기타

7202.5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7202.60 - 페로니켈(ferro-nickel)

7202.7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7202.80 - 페로텡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텡스텐(ferro-silico-tungsten)

- 기타

7202.91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7202.92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7202.93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7202.99 -- 기타

합금철(ferro-alloy)은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정의되어 있다.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텡스텐(볼프람(wolfram))·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량이 2% 이하라는 점이다.

합금철(ferro-alloy)은 일부 가단성(可鍛性)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압연용·단조(鍛造 : forging)용과 그 밖의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의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철강공업에서 강(鋼 : steel)이나 선철(銑鐵 : pig iron)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는데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순수한 원소의 사용이 비실용적이며, 비경제적인 경우에 사용한다. 또한 어떤 것은 탈산제, 탈황제, 탈질제(de-nitrating agent)나 진정강용(鎮靜鋼用 : killing steel)으로 이용되며 한편으로 그 밖의 것은 용접용이나 금속 증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특정의 합금철은 직접적으로 주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 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

페로실리콘(ferro-silicon)은 또한 그 표면이 특수 공정에 의하여 경화(硬化)된 구상(球像)의 과립(果粒) 가루 모양이며, 금속광의 비중분리[부유(浮遊 : flotation)선별]에 있어서 중액(重液 : dense medium)("pulp")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알갱이 나 가루 상태로 이미 환원된 형태의 제품과 시멘트나 그 밖의 접착제에 의해 브리켓(briquette)·실린더·박(薄 : foil) 슬래브로 응집한 형태의 제품을 분류하며, 어떤 경우에는 발열제를 가한 것도 있다.

일부 합금철(ferro-alloy)[예: 페로망간(ferro-manganese)과 페로실리콘(ferro-silicon)]는 용광로에서 제조되지만, 보통은 전기로나 "테르밋(thermit)" 공정 등에 의해 도가니에서 더 많이 제조한다.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페로-망간(ferro-manganese)
-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 (3)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 (5)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 (6) 페로-니켈(ferro-nickel)
- (7) 페로-몰리브덴(ferro-molybdenum)
- (8) 페로-텅스텐(ferro-tungsten)[페로-볼프람(ferro-wolfram)]과 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 (9)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 (1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 (11) 페로-니오븀(ferro-niobium)
- (12) 페로-실리코-마그네슘(ferro-silico-magnesium)과 페로-실리코-칼슘(ferro-silico-calcium)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산화몰리브덴(molybdenum oxide) · 칼슘몰리브데이트(calcium molybdate)와 탄화규소와 같은 합금철과 동일 목적이나 동일 방법으로 사용하는 화학 물품(다만, 철 · 규소화칼슘과 규소화망간의 함량이 전 중량의 4%미만으로 함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8류**)
- (b) 페로-우라늄(ferro-uranium)(**제2844호**)
- (c) 페로-세륨(ferro-cerium)과 그 밖의 발화성 철합금(모양이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3606호**)
- (d) 일부 국가에서 때때로 페로-니켈(ferro-nickel)이나 페로-니켈-크롬(ferro-nickel-chrome)으로 알려진 제품으로서, 가단성이 있고 보통 철강야금(冶金)에 있어서 첨가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제7218호에서 제7229호까지**나 **제75류**)

72.03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lump)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7203.90 - 기타

이 호에는 용융(溶融 : fusion)하지 않고 광석을 환원시켜 제조한 철제품을 분류한다(이 류 총설(1) - (B) 참조). 이들 제품은 조개탄 모양의 선광이나 펠릿 모양의 광석으로부터 얻는다. 이들은 보통 금속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를 초과하며, 해면구조이다(해면철). 이들은 강(鋼 : steel)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제품은 조개탄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의 것으로 제2601호에 해당하는 선광(選鑛)과 혼돈해서는 안되며 ; 전자는 그들 절단된 표면의 변형이외는 외양에 의해서 명백히 후자와 구별된다.

직접 환원에 의하여 얻는 페로(ferrous)제품은, 그 제품이 거칠고 다공성(多孔性)의 표면을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다른 스펀지 페로 제품(spongy ferrous product)[아토미제이션법(atomisation technique)에 의하여 용융선철(溶融銑鐵 : molten pig iron)에서 제조]은 용융(溶融)상태를 거쳤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등근 표면을 가진 사실에 의하여 쉽게 구별된다.

또한 이 호에는 고순도의 철(즉, 불순물의 함유량이 0.06%를 초과하지 않는 철)을 분류한다. 연구실험이나 어떤 철가공산업[예: 분야금(粉冶金 : powder metallurgy)]부문에 사용하는 이 철은 좋은 금속용 희석제(diluent)가 된다.

이 호에서는 흔히 “스틸 스펀지(steel sponge)”로 알려진 강(鋼)의 울(steel wool)을 **제외한다(제7323호)**.

72.04 -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21 -- 스테인리스강의 것

7204.29 -- 기타

7204.3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41 --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
·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204.49 -- 기타

7204.5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A)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이 호에는 제15부의 주 제8호가목에 정의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이러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잡다한 종류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 (1) 철강의 제조나 기계적 가공공정에서 생긴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크롭엔즈(crop ends)·파일링(filings)과 선삭(旋削 : turnings)]
- (2) 파손·절단·마손(磨損 : wear)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확히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강 물품과 그러한 물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이러한 철강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크기와 품질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으로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한다.
 - (a) 무겁고 긴 물품의 전단(剪斷)이나 불꽃절단(flame-cutting)
 - (b) 특히 가벼운 스크랩인 경우, 예를 들면, 수압 프레스(hydraulic press)를 사용해서 베일상으로 압착

- (c) 아주 청결한 고밀도의 물품을 얻기 위하여 선별에 수반된(자석을 이용하기도 한다) 차량 차체와 그 밖의 가벼운 스크랩(scrap)을 파쇄하는 것(조각조각 내는 것)
- (d) 철강의 파일링(filings)과 선삭(旋削 : turnings)을 조개탄 모양으로 잘게 부쇄 응집하는 것
- (e) 고철제품의 해체작업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일반적으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 재생에 사용하거나 화공품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보수나 수선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다른 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제외하며** ; 또한 본래의 금속으로 재생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물품도 **제외한다**. 예를 들면, 낡은 부분을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축용의 철강제품 ; 광산의 탄광 갱구용(坑口用) 버팀기둥(pitprop)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재압연하여 타 물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후한 철도선로 ; 닳고 손질한 후 재사용할 수 있는 강재(鋼)의 줄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역시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a) 철강의 제조과정에서 생긴 광석찌꺼기·드로스(dross)·스케일링(scalings)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금속 재생용에 적합한 것이라도 상관없다)(**제2619호**)
- (b) 방사성이 있기 때문에 철강산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제2844호**)
- (c) 선철(銑鐵 : pig iron)이나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의 부서진 조각(**제7201호**)

(B) 철강의 재용해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이들 제품은 이 류의 주 제1호사목에 정의되어 있다. 그들은 보통 고합금강의 잉곳(ingot) 모양이나 피그(pig)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미세한 모양의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예: 연마 더스트(dust)나 미세한 연삭 칩을 재용해하여 주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은 압연되지 않으며 강(鋼)을 제조할 때 첨가물로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주조 작업이 이미 사용한 냉각 주형속에서 주조되었기 때문에 거칠고 표면이 고르지 못하며, 기포(氣泡 : bubbles)·균열·쪼개진 흠과 수축된 구멍을 갖는다. 잉곳(ingot) 모양으로 주조할 때는 통풍구가 없이 주조된다. 따라서 이들 물품은 피더 헤드(feeder head : 압탕두)나 핫톱(hottop : deadhead)의 흔적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불규칙한 표면을 가지며, 때로는 상층부의 끝에는 흠통의 모양인 것도 있다. 이들 표면은 흔히 분화구 모양의 흠을 가지는데 그 속에 있는 기포성 불순물의 일부분이 관측된다.

72.05 -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 ·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 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 - 알갱이

- 가루

7205.21 -- 합금강의 것

7205.29 -- 기타

(A) 알갱이(granule)

알갱이는 이 류의 주 제1호아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에는 알갱이, 즉, 형태가 다소 둥근 작은 포환(shot) · 각이 난 “그릿(grit)”과 같은 알갱이를 포함한다.

숫(shot)은 액체상태의 철강을 냉수나 증기의 분류(噴流) 속에 부어 넣음으로써 제조되고, 그릿(grit)은 숫(shot)을 부수거나 경화(硬化)금속의 판 등을 냉간(冷間) 파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들 물품은 사이즈에 의해 등급이 매겨졌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해당한다.

숫(shot)와 그릿(grit)은 금속의 세정, 스케일제거(de-scaling)나 표면경화(숫피닝 : shot peening), 금속 · 유리의 연마와 조각, 석재가공 등에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때때로 경화제로서 콘크리트에 첨가되거나 X-선이나 감마선의 불투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 호에서는 철강선을 절단함으로써 생산되는 **와이어 펠릿(wire pellet)**을 포함하며 이는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은 목적에 사용한다.

(B) 가루(powder)

가루는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철(銑鐵 : pig iron) ·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이나 철강의 가루는 응집하는데 적합한 재료로서 용융(溶融 : molten) 철강의 분무 · 산화철의 환원(건조공정) · 선철(銑鐵 : pig iron) · 해면철이나 강선의 파쇄 · 침전(습식공정) · 카보닐(carbonyl)철의 분해 · 철염수용액의 전기분해 · 철강을 잘게 부수는 방법[잘게 부순 파일링(filings)을 포함한다]에 의해 제조한다.

철강의 가루(해면철의 가루 포함)는 소결(燒結 : sintered)하여 여러 가지의 제품(전화기 · 자석발전기 등의 전자석 코일용의 코어 포함) 제조에 사용한다. 또한 용접전극봉과 용접용의 가루 제조에 사용하며, 화학공업(특히 환원제로서) 및 의약품의 제조[철 파일링(iron filing)철을 잘게 부쇄 얻어진 가루]에 사용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방사성의 철가루(동위원소)(**제2844호**)

(b)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조제된 철가루

(c) 합금철(ferro-alloy)의 알갱이와 가루(**제7202호**)

- (d) 철강의 파일링(filings)과 선삭(旋削 : turnings)의 웨이스트(waste)(제7204호)
- (e) 작은 포환(shot)과 동일 용도에 사용하기는 하나 소형의 결함있는 베어링 볼(bearing ball)은 제84류의 주 제6호에 따라, 제7326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베어링 볼은 보다 규칙적이고 매끈한 외양을 가졌으며 양질의 강(鋼 : steel)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쏫(shot)과 구별된다.
-

제2절

철과 비합금강

(제7206호 - 제7217호)

총설

다음 물품이 철이나 비합금강의 것이라면 이 절에 포함한다.

- (1) 퍼들바(puddled bar) · 파일링(piling) · 블록(block) · 럼프(lump) · 잉곳(ingot)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의 것[용융(溶融 : molten) 상태의 강(鋼 : steel)을 포함한다](제7206호)
- (2) 블룸(bloom), 빌릿(billet), 라운드(round), 슬래브(slab), 시트바(sheet bar), 단조(鍛造 : forging)에 의해 거칠게 모양된 물품, 형강(angles-shapes-sections)용 블랭크(blank)와 같은 반제품(제7207호)
- (3)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에서 제7212호)
- (4) 불규칙적인 코일 모양의 것으로 열간(熱間) 압연된 봉(bar · rod)(제7213호)과 그 밖의 봉(bar · rod)(제7214호나 제7215호)
- (5) 형강(形鋼 : angle · shape · section)(제7216호)
- (6) 선(線 : wire)(제7217호)

72.06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 잉곳(ingot)

7206.90 - 기타

(I) 잉곳(ingot)

잉곳(ingot)은 이 류 총설에 기술된 공정 중 하나에 의해 제련된 후 철금속으로 주조된 일차적 형태의 것이다. 횡단면은 보통 정방형 · 장방형 · 8각형의 것이며 주형으로부터 쉽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일단이 다른 쪽의 단보다 두껍다. 규칙적이고 균일한 표면을 가지며, 흠이 없다.

잉곳은 그 후에 일반적으로 반가공제품으로 압연이나 단조(鍛造 : forging) 처리되는데, 종종 바로 봉(bar) · 판(sheet)이나 그 밖의 완제품으로 압연이나 단조(鍛造) 처리된다.

(II)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용융(溶融 : molten) 상태의 강(鋼)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또한 블록(block) · 럼프(lump) · 퍼들바(puddled bar)와 파일링(piling)을 포함한다.

블록(block)과 럼프(lump)는 주로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거나 전해침전에 의해 제조한 “응집물(agglomerate)”이나 “빌드업(build-up)”으로부터 얻어진다. 페이스트(paste) 상태의 럼프(lump)나 볼(ball)로부터 압착기를 사용하거나 “싱글링(shingling)” 이나 해머링(hammering)해서 찌꺼기(slag)의 대부분이 제거되며, 압연 후 얻어진 **퍼들바(puddled bar)와 파일링(piling)**은 찌꺼기의 존재로 인해 섬유질 구조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들 제품은 예를 들면, 앵커체인(anchor chain)과 호이스트 훅(hoisting hook)과 같은 특별한 용도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제7204호**)
- (b) 연속주조에 의해 얻어진 제품(**제7207호**)

72.07 -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7207.11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7.12 --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7207.19 -- 기타

7207.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에 대하여는 이 류의 주 제1호자목에 정의 되어 있다. 이 주에 있어서 “제1차 열간(熱間) 압연을 거친(subjected to primary hot-rolling)”이라는 용어는 그들에게 거친 외관을 부여하는 압연 작업을 거친 제품에 적용된다.

이 호에는 블룸(bloom)·빌릿(billet)·라운드(round)·슬래브(slab)·시트바(sheet bar)·단조(鍛造 : forging)에 의한 거친 형태의 물품·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의 블랭크(blank), 그리고 연속주조에 의해서 얻어진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A) 블룸(bloom)·빌릿(billet)·라운드(round)·슬래브(slab)와 시트바(sheet bar)

이들 제품은 모두 제7206호에 분류하는 잉곳(ingot)·퍼들바(puddled bar)나 파일링(piling)을 열간(熱間) 압연이나 단조(鍛造 : forging)하여 얻는다. 이들은 추가적인 열간(熱間) 압연이나 단조(鍛造 : forging)하기 위한 반제품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크기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즉, 가장자리가 정교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표면은 가끔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으며 제조공정에서 생긴 마크(예: 롤러 마크)가 남아 있을 수가 있다.

블룸(bloom)은 보통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며 **빌릿(billet)**보다 크다. 빌릿(billet)은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이다. 양자는 재압연에 의해 봉(bar·rod)·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등이나 단조(鍛造)품(forging) 제조에 사용한다.

라운드(round)는 횡단면이 원형이거나 변이 네 개보다 많은 다각형의 물품으로 주로 무게목(無繼目) 강관제조용의 중간제품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반제품에 대한 공통적인 일반 특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보통 1~2m의 길이로 공급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봉(bar·rod)과 구별되며, 그들의 끝부분은 흔히 블로우(blow) 램프에 의해서 절단[보통 더 정교하게 절단되는데 바(bar)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구별된다.

슬래브(slab)·시트바(sheet bar)도 역시,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이지만 폭이 두께보다 상당히 크며, 슬래브는 시트바보다 두껍다. 그러므로 슬래브는 보통 재압연하여 후판(厚板 : thick plate)을 만들고 시트바(sheet bar)는 보통 박판(sheet)이나 스트립(strip)의 제조에 사용한다. 틴플레이트바(tinplate bar)는 틴플레이트(tinplate)의 제조에 사용하는 시트바 형태의 것이다[슬래브·시트바와 특정의 판(certain plate)의 구분은 아래 제7208호 해설을 참조].

(B) 조단조품(粗鍛造品 : roughly shaped by forging) 피스

이들 물품은 외양이 거칠고 치수에 대한 오차(tolerance)가 큰 반제품으로서 블록(block)이나 잉곳(ingot)을 파워해머(power hammer)를 사용하거나 단조(鍛造)용 프레스에 의하여 제조한다. 이 경우 완제품을 만들 때 필요 이상의 웨이스트(waste)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완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잡한 모양을 만든다. 그러나 단조(鍛造 : forging)·프레스(pres)·선반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을 하여야만 완제품의 모양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물품만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잉곳(ingot)이 평평한 지그재그(zig-zag)의 모양으로 거칠게 타발되고 선박용 크랭크샤프트(crankshaft)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가공을 하여야만 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하지만 최종 기계로 만들기에 알맞도록 단조(鍛造)된 크랭크샤프트(crankshaft forging)는 **제외한다**. 주형 사이를 단조(鍛造)함으로써 제조되는 드롭 단조(鍛造)품과 프레스(press) 제품은 최종기계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이므로 이 호에서 **제외한다**.

(C) 형강(形鋼 : angle, shape or section)의 블랭크(blank)

형강(形鋼 : angle · shape · section)의 블랭크(blank)는 완제품의 형태에 적합한 복잡한 모양의 횡단면을 가졌으며, 이에 부합된 압연 공정을 거친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와이드플랜지 빔(wide flanged beam)이나 거더(girder)의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D) 연속주조에 의해 얻는 반제품

이 그룹에는 어떤 형태이든 연속주조에 의해 얻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모든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을 포함한다.

이 공정에서 강(鋼)은 다른 주조생산 라인에 공급하는 분배기에 레이들(ladle)로부터 운반되어진다. 이들 생산라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 (a) 밑바닥이 없고, 냉각장치를 가진 주형
- (b) 주형 바깥쪽에 있는 주조금속을 냉각하기 위한 물 분무용 장치
- (c) 응고된 금속을 규칙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컨베이어 롤러 그룹 ; 그리고
- (d) 절단기계 장치와 그에 따르는 철거장치

연속주조에 의한 제품과 그 밖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하여는 이 류의 총설(III)을 참조할 것

72.08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7208.1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 7208.25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7208.26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7208.27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7208.36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7208.37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7208.38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7208.39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7208.4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7208.5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7208.5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7208.5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7208.5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7208.90 - 기타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은 이 류의 주 제1호차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제품은 다음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 (1) 금속의 열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산화스케일(oxide scale)과 불순물 딱지(crust)를 제거하기 위한 스케일링제거(descaling)·피클링(pickling)·스크레이핑(scraping)과 그 밖의 공정.
- (2) 오직 부식(腐蝕)이나 그 밖의 산화(酸化)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운송 중 미끄럼을 막으며, 활성방청안료[예를 들면, 적연·아연가루·산화아연·크로뮴산아연·산화철(연단철·쥬얼러 루즈(jewellers rouge)]를 함유한 착색(페인트)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거친 코팅과 오일, 그리스(grease)·왁스·파라핀왁스(paraffin wax)·흑연(graphite)·타르나 역청(bitumen)을 기본 재료로 한 비안료 코팅(non-pigmented coating)
- (3) 연마·광택내기[버니싱 : burnishing]나 이와 유사한 처리

(4) 인공산화(산화용액 안에서의 담그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화학공정에 의한)·녹청가공·블루잉[청열소둔(燒鈍 : blue annealing)]이나 그 외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품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브라우닝(browning)이나 브론징(bronzing)(여러 가지 기법에 의한). 이런 작업은 녹청의 저항을 증대시킨다.

(5) 다음과 같은 화학적 표면처리방법

- 인산염 피복법 : 이는 인산염 금속산의 용액 특히 망간(manganese)·철과 아연의 용액에 제품을 담금(침지)으로써 이루어지며 ; 이와 같은 공정은 작업기간과 중탕기(bath)의 온도에 따라 구분되는 파아커라이징법(parkerising)이나 본데라이징법(bonderising)으로 알려져 있다.
- 수산염 처리·붕산염 처리 등 : 이는 적당한 염(salt)이나 산(acid)을 사용한 인산염 피복법의 공정과 유사한 처리방법이다.
- 크로메이트(chromating) 처리 : 주 함유물이 크롬산이나 크롬산염인 용액에 제품을 담금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들 화학적 표면처리는 처리된 제품을 나중에 냉간(冷間 : cold) 변형을 용이하게 하거나 페인트나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llic)적 보호 코팅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이 호의 평판압연제품은 압연작업에서 직접 생긴 양각의 무늬[예: 홈·리브(rib)·바둑판·물방울·단추·마름모 모양의 무늬]를 가질 수 있으며, 압연한 후에 가공(예: 구멍내기·주름잡기·사각형으로 만들거나 가장자리 둥글게 하기)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금속으로 도포·도금이나 피복되었거나, 페인트·에나멜(enamel)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비(非)금속(non-metallic)물질(제7210호)로 도포된 평판압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귀금속을 입힌 평판압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제71류)**.

“물결 모양으로 주름진 평판압연제품(corrugated flat-rolled products)”이란 곡선(예: 정현곡선)형의 규칙적인 물결무늬를 가진 평판압연제품을 말한다. 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주름면의 폭은 주름형태 내에서 유효한 폭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각의 윤곽(예: 정사각형·삼각형·부등변사각형)을 가진 소위 립드 제품(ribbed products)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7216호).

이 호에는 평판압연제품이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를 가진 모든 크기의 평판압연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와이드코일(wide coil)”·“시트(sheet)”와 “플레이트(plate)”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wide flat)”[이들 중 일부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 “유니버설 플레이트(universal plate)”라고 부른다]라고 호칭하는 어떤 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와이드플랫(wide flat)”이란, 코일 상태가 아니며 클로즈드 박스패스(closed box pass)나 유니버설압연기(universal mill)로 사면이 열간(熱間) 압연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횡단면을 가지며 두께가 4mm를 초과하고 폭이 600mm 이상 1,250mm 이하의 제품을 말한다.

그래서 “와이드플랫(wide flat)”은 “와이드코일(wide coil)”, “시트(sheet)”나 “플레이트(plate)”의 것들 보다 더 곧고 더욱 정밀하게 가공된 면과 예리한 가장자리를 가졌으며, 재압연 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가장자리에 대한 더 이상의 기계 처리 없이 구조물품인 강재 등에 사용한다.

“와이드코일”·“플레이트”와 “시트”는 잉곳(ingot)·슬래브(slab)와 시트바(sheet bar)를 열간(熱間)압연하여 제조되고 있으나 가끔, 가로나 세로로 절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다.

“플레이트”와 “시트”가 평면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와이드코일”은 거의 평면으로 계속하여 겹쳐진 층의 코일로 감긴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와이드코일”은 “시트”와 “플레이트”와 구별되어질 수 있다.

열간(熱間)압연으로 제조한 “와이드코일”은 “시트”와 “플레이트”와 같은 상태에 직접 사용하거나, “시트”와 “플레이트”, 용접된 관(管), 형강(形鋼 : angle · shape · section)제품과 같은 그 밖의 제품으로 전환 사용한다.

“시트”와 “플레이트”는 강도가 요구되는 선박·철도차량·탱크·보일러·다리·그 밖의 가공구조물 제조에 사용한다. 어떤 “시트”와 “플레이트”는 슬래브(slab)나 시트바(sheet bar)와 크기가 유사한 것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슬래브나 시트바와 구별될 수 있다.

- (1) 그들은 (가로와 세로로) 압연된 것이 많으며, 또 때로는 사선 방향으로 압연(oblique-rolled)된 것도 있다. 이에 반하여, 슬래브와 시트바는 조압연기(粗壓延機 : slabbing or roughing mill)로 세로 방향으로만 거칠게 압연된다.
- (2) 그들의 가장자리는 보통 전단기나 가스 절단설비에 의해 절단되어 있어서 전단이나 가스 절단의 흔적을 그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슬래브와 시트바는 그 가장자리가 둥글다.
- (3) 그들은 두께와 표면의 결함에 관한 오차허용범위가 매우 엄밀함이 요구된다. 이에 반하여, 슬래브와 시트바는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표면 결함을 보여준다.

*
* *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a) 철강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314호)
- (b) 제82류에 해당하는 제품의 블랭크(blank)

○
○ ○

[소호해설]

소호 제7208.10호·제7208.25호·제7208.26호·제7208.27호·제7208.36호·제7208.37호·제7208.38호·제7208.39호·제7208.40호·제7208.51호·제7208.52호·제7208.53호와 제7208.54호

이 소호의 제품들은 열간(熱間)압연(hot-rolling)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 (1) 열간(熱間) 평판작업(hot flattening)
- (2) 금속의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둔(annealing)·경화(hardening)·소려(燒戻 : tempering)·표면경화(case-hardening)·질화(nitriding)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heat treatment)

- (3)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7208호 해설 두 번째 문단의 (1)과 (2)항에 규정한 표면처리
- 스케일 제거(descaling)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a) 산세척(acid pickling)나 환원처리(화학처리나 열처리)[석회유액에 의한 처리(liming)와 함께 연결처리했는지에 상관없다]
 - (b) 기계적 스케일제거(de-scaling)에 의한 것[평삭(平削 : planing) · 거친 연마 · 거친 sanding · sand-blasting 등] 기계적으로 스케일을 제거한 제품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다.
 - (i) 평삭(平削)된 강(鋼)은 육안으로 분명하게 볼 수도 있고, 만져서 알 수도 있는, 연속평행의 거친 자국을 띠는 맑은 표면을 가지고 있다.
 - (ii) 거칠게 연마되거나, 거칠게 샌딩한(sanded) 표면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가공이기에 고르지 못하며, 연마기가 남겨놓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 표면에 정교한 연마는 반사성까지도 가질 정도로 맑은 면과 함께 아주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 준다. 때로는 가공용 도구가 남겨놓은 자국이 사실상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 (4) 이 류 총설(IV)(B) 마지막 절에 규정한 스킨(skin)이나 핀치 패싱(pinch passing)
- (5) 상표(trademark)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 : inscription)을 표시하는 스탬핑(stamping) · 펀칭(punching) · 프린팅(printing) 등
- (6)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으로 절단
- (7) 금속에 흠집만을 발견하기 위한 공정

72.09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7209.16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7209.17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7209.18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7209.26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7209.27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7209.28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7209.90 - 기타

제7208호의 해설에 관한 규정은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이 호의 냉간(冷間)압연(cold-rolled) 제품과 제7208호의 열간(熱間)압연(hot-rolled) 제품과의 구분기준은 이 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 - 총설(IV)(B) 참조

특수한 특성[좋은 표면가공·냉간(冷間 : cold)성형의 적성·엄격한 허용오차·일반적으로 축소된 두께·높은 기계적 강도 등]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보통 그들의 열간(熱間)압연(hot-rolled)된 대응 물품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며 그들은 점점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 호의 제품들은 특히 자동차 차체·금속가구·가정용기구·중앙난방 방열기, 그리고 냉간(冷間 : cold) 공정(성형법이나 프로파일링 중 어느 하나)에 의한 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 제조에 사용한다. 그들은 도포[주석도금·전기도금·니스칠(vernishing)·에나멜칠(enamelling)·래커칠(lacquering)·페인팅칠(painting)·플라스틱 코팅 등에 의한]가 용이하다.

이들 제품은 흔히 소둔(燒鈍 : annealing)·소준(燒準 : normalising)이나 그 밖의 열처리 후에 인도되며, 만일 이들 제품이 두께가 아주 얇은(일반적으로 0.5mm 미만) 것으로 그 표면이 주석도금·니스칠(vernishing)이나 인쇄하기에 적합하도록 산으로 닦여 있다면, 비록 코일 모양일 지라도 “블랙플레이트(black plate)”로 표시되기도 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7209.15호 · 제7209.16호 · 제7209.17호 · 제7209.18호 · 제7209.25호 · 제7209.26호 · 제7209.27호와 제7209.28호

냉간(冷間) 압연(cold-rolling)에 추가하여 앞에서 설명한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 (1) 평판작업(flattening)
- (2)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燒鈍 : annealing) · 소려((燒戻 : tempering) · 표면경화(case-hardening) · 질소화(nitriding)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heat treatment)
- (3) 피클링(pickling)
- (4) 제7208호 해설 2번째 문단 제(2)항에 규정한 표면처리
- (5) 상표(trademark)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 : inscription)을 표시하는 스탬핑(stamping) · 펀칭(punching) · 프린팅 등
- (6)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으로 절단
- (7) 금속의 흠집만을 발견하기 위한 공정

72.1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10.11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7210.12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7210.2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 7210.3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10.41 -- 물결 모양의 것
- 7210.49 -- 기타
- 7210.5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10.61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10.69 -- 기타
- 7210.70 -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 7210.90 - 기타

이 호에는 제7208호나 제7209호에 기술된 물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은 피복·도금이나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호에서 “클래드·도금이나 도포한(clad, plated or coated)”이란 표현은 제72류 총설 부분(C)(2)의 (d)(iv), (d)(v)와 (e)항에서 규정한 처리 중 하나를 제품에 적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a) 귀금속으로 피복된 평판제품(**제71류**)
- (b) **제8310호**의 제품



[소호해설]

제7210호의 소호에서 도포(coating)·도금(plating)이나 클래딩(cladding) 공정의 한 개 유형 이상을 거친 제품은 최종 공정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크론산염처리와 같은 화학적 표면처리는 최종 공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호 제7210.30 · 제7210.41과 7210.49호

소호 제7210.30호의 제품들은 제72류 해설서 총설 두번째 단락의(IV)(c)(2)(d)(iv)에 나열된 공정을 거친 것이며, 소호 제7210.41과 제7210.49호의 제품들은 이 해설서(IV)(c)(2)(d)(iv)에 나열된 것 중 앞에서 설명한 소호들에 해당되는 전기분해적인 공정을 제외한 그 밖의 작업공정 중의 어느 것을 거친 것이다.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도포한 제품과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제품들의 구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이 제품은 먼저 육안이나 현미경 관찰에 의해서 스팅글(spangle)의 존재 여부를 검사한다.
- 만약, 스팅글(spangle)이 발견되면, 그들은 열간(熱間)침지법(hot-dipped)으로 아연 도포(zinc-coated)한 제품이다. 50배로 확대해도 스팅글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포제에 대해서는 화학적 분석을 해야 한다.
- 알루미늄이 발견되거나, 납이 0.5%를 초과하여 발견되면, 그들은 열간(熱間)침지법으로 아연 도포한 제품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들은 전해방법에 의한 아연 도포된 제품이다.

72.11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 --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7211.14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1.19 -- 기타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7211.29 -- 기타

7211.90 - 기타

이 호에는 제7208호나 제7209호에 기술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폭이 600mm 미만이어야 한다.

제7208호와 제7209호의 해설규정은 폭과 관련된 규정(또한 이 류의 총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이 호의 제품은 폭이 150mm를 초과 600mm 미만의 “와이드플랫(wide flat)”[“유니버설 플레이트(universal plate)”]과 후프(hoop)와 스트립(strip)을 포함한다.

후프와 스트립은 보통, 제7207호의 반제품을 열간(熱間) 재압연하여 제조하며, 그 후에 얇은 제품과 양질의 완제품이 되도록 냉간(冷間) 압연(cold-rolled) 작업을 한다. 스트립(strip)은 또한 제7208호나 제7209호의 “와이드코일(wide coil)” “시트(sheet)”나 “플레이트(plate)”를 세로로 슬리팅(slitting)하여 제조한다.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굴곡(ribbed)을 만드는 것·체크무늬를 넣는 것·양각한 것·가장자리를 경사지게 하거나 둥글게 하는 것]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들 제품은 많은 용도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상자·통과 그 밖의 용기의 테로 함석판을 기저로 한 ; 용접관·공구(예: 톱날)·냉간(冷間 : cold) 성형된 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컨베이어(conveyor)와 기계용 벨트 제조에 사용하고, 자동차공업에서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품제조 [스탬핑(stamping)·폴딩(folding) 등에 의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철강으로 만든 곧 후프(올타리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제7313호)

(b) 한쪽면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되었거나 경사지게 된 것으로 주름이 잡힌 대와 목재부분품을 조립하는데 사용하는 기다란 물결 모양의 못(제7317호)

(c) 제82류 해당 물품의 블랭크(blank)[스트립(strip) 모양의 면도날 블랭크를 포함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7211.13·제7211.14호와 제7211.19호

소호 제7208.10호·제7208.25호·제7208.26호·제7208.27호·제7208.36호·제7208.37호·제7208.38호·제7208.39호·제7208.40호·제7208.51호·제7208.52호·제7208.53호와 제7208.54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소호 제7211.23호와 제7211.29호

소호 제7209.15호·제7209.16호·제7209.17호·제7209.18호·제7209.25호·제7209.26호·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72.12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7212.1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12.2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12.3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12.40 -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 7212.5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12.60 - 클래드(clad)한 것

이 호에는 제7210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지만,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 폭이 600mm 미만인 제품이어야 한다.

이 호에서는 절연(絶緣 : insulate)한 전기스트립(electric strip)을 **제외한다(제8544호)**.



[소호해설]

도포(coating) · 도금(plating)나 클래딩(cladding) 공정의 한 개 유형 이상을 거쳐 만든 제품에 관하여는 소호 제7210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고할 것

소호 제7212.20호와 제7212.30호

소호 제7210.30호 · 제7210.41호와 제7210.49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고할 것

72.13 -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7213.20 -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7213.91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3.99 -- 기타

열간(熱間)압연(hot-rolled)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의 **봉(bar·rod)**은 이 류의 주 제1호카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제품[선재(線材: wire rod)라고도 부른다]은 주로 선(제7217호)의 인발(引拔: drawing)용으로 사용하나, 이들은 건축용(예: 용접된 철망과 같이)·너트와 볼트 공업용·냉간인발(冷間引拔: cold-drawing) 공업용 등과 같은 그 밖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며, 용접봉 제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콘크리트 보강용 봉(bar·rod)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제품은 요철 모양[예: 치아형·그루브형·플랜지(flange)형]으로 압형되며, 그들의 횡단면 모양이 이 류의 주 제1호카목에서 **규정한** 기하학적 모양 중의 하나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요철 모양은 단지 콘크리트 등과의 접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봉(bar·rod)을 끈게 해서 길이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제7214호)**.

72.14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 단조(鍛造)한 것

7214.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7214.3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7214.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은 제외한다)

7214.99 -- 기타

그 밖의 **봉(bar·rod)**은 이 류의 주 제1호타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봉은 보통 블룸(bloom)·빌릿(billet)·퍼들바(puddled bar)나 파일링(piling)을 열간(熱間)압연(hot-rolling)이나 단조(鍛造 : forging)하여 만든다. 이들은 또한 열간인발(熱間引拔 : hot-drawing)이나 열간(熱間)압출(hot-extrusion)로 제조하는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밖의 압연·단조(鍛造 : forging)나 인발(引拔 : drawing)제품과 구별된다.

(1) 퍼들바(puddled bar)(제7206호)·블룸(bloom)·빌릿(billet)·라운드(round)·슬래브(slab)와 시트바(sheet bar)(제7207호)보다 더 정교하고 완성된 외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 횡단면은 균일하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것인 경우에는 예리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2) 그들은 제7208호나 제7211호의 제품보다 폭에 비해서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다.

이 호의 봉은 주로 일직선 길이 상태나 구부러 접은 다발 상태로 인도된다.

이 호의 제품은 다음과 같은 표면 처리를 거친 것일 수도 있다.

(1) 금속의 열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산화스케일(oxide scale)과 크리스트(crust)를 제거하기 위한 스케일제거(descaling)·피클링(pickling)·스크레이핑(scraping)과 그 밖의 공정

(2) 오직 부식(腐蝕)이나 그 밖의 산화(酸化)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운송 중 미끄럼을 막으며, 활성방청안료 [예를 들면, 적연·아연가루·산화아연·크로뮴산아연·산화철(연단철·주얼러 루즈(jeweller rouge))]를 함유한 착색(페인트)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거친 코팅(coating)과 오일(oil)·그리스(grease)·왁스(wax)·파라핀왁스(paraffin wax)·흑연(graphite)·타르(tar)나 역청(bitumen)을 기본 재료로 한 비안료 코팅

(3) 시험목적으로 금속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요철 모양[예: 치형·그루브형·플랜지(flange)형]으로 압연되는 봉으로서, 그들의 횡단면 모양이 이 류의 주 제1호타목에서 **규정한** 기하학적 모양 중의 하나와 일치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 이러한 요철 모양은 단지 콘크리트와의 접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2) 압연 후 개별적으로 꼬아서 만든 봉으로,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수직 플랜지(flange)를 갖게 압연한 봉을 꼬아서 나선 모양을 만든 것[강(鋼)“twist”]; 그리고

(3) 운송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봉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둘 이상의 압연된 봉을 함께 꼬아서 만든 제품(**제7308호**)

(b) 봉에서 절단해 낸 조각으로 길이가 횡단면의 최대 치수 이하인 것(**제7326호**)

72.15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5.50 -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5.90 - 기타

이 호에는 **제7213호**나 **제7214호**의 것 **이외의** 봉(bar·rod)을 분류한다.

이 호의 봉은 :

- (1) 냉간(冷間 : cold) 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에 의해 얻어진다. 즉, 하나 이상의 다이(die)를 냉간(冷間) 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연마공정이나 선반공정(연마된 바나 사이즈 된 바)을 거친 것이다.
- (2) 드릴링(drilling)이나 사이징(sizing)과 같은 가공을 거쳤거나 제7214호의 제품에 허용된 가공보다 더 나은 표면처리, 즉, 도금·도포·클래딩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쳐야 하며(이 류 총설(IV)(C) 참조),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는 안된다.

냉간(冷間) 성형 되었거나 냉간(冷間) 처리된 봉은 일직선 길이 상태로 인도되며, 그로 인하여 항상 코일(coil) 모양인 제7217호의 선과 구별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열간(熱間)압연(hot-rolling) 후 꼬아서 만든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제7214호**)
- (b) 중공(中空 : hollow)드릴봉(**제7228호**)
- (c) 둘 이상의 압연된 봉을 함께 꼬아서 만든 제품(**제7308호**)
- (d) 끝을 가늘게 한(tapered)한 철강의 봉(**제7326호**)



[소호해설]

소호 제7215.10호와 제7215.50호

냉간(冷間) 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에 추가해서, 이들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쳤던 것일 수 있다.

- (1)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
- (2) 제7208호 해설서 제2절 2항에서 기술한 표면처리
- (3) 상표(trademark)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 : inscription)을 표시하는, 스탬핑(stamping)·펀칭(punching)·프린팅 등
- (4) 금속의 흠집만을 발견하기 위한 공정

72.16 -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 7216.10 - 유(U)형강 · 아이(I)형강 ·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7216.21 -- 엘(L)형강
- 7216.22 -- 티(T)형강
 - 유(U)형강 · 아이(I)형강 ·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7216.31 -- 유(U)형강
- 7216.32 -- 아이(I)형강
- 7216.33 -- 에이치(H)형강
- 7216.4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7216.5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7216.6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 7216.69 -- 기타
 - 기타
- 7216.9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 7216.99 -- 기타

형강(形鋼 : angle · shape · section)은 이 류의 주 제1호과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에 해당되는 형강(形鋼)의 모양은 보통 H · I · T · Ω · Z · U[구상(溝狀 : channel)도 포함한다] · 둔각 · 경각이나 직각(L)형이다. 여기의 형강(形鋼)은 각이 직각인 것과 둥근 것 · 이변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 · 단부(端部 : edge)가 구상인 것과 구상이 아닌 것[구상 앵글(bulb angle)이나 조선용 빔(shipbuilding beam)]이 있다.

형강(形鋼)은 보통 블룸(bloom)이나 빌릿(billet)을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hot-drawing) · 열간(熱間)압출(hot-extrusion)이나 열간단조(熱間鍛造 : hot-forging)나 단조(鍛造 : forging)하여 제조한다.

이 호에는 냉간(冷間 : cold)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예: 냉간인발(冷間引拔 : cold-drawing) 등]한 물품을 포함하며, 롤형 기계에서 성형해서 만든 형강(形鋼)이나 프레스(press)에서 시트(sheet) · 플레이트(plate) 또한 스트립(strip)을 성형해서 만든 형강(形鋼)도 분류한다. 각이 진 프로파일(profile)을 가지고 있는 소위 “립드 시트와 립드 플레이트(ribbed sheet and plate)”도 여기에 분류한다.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drilling)·펀칭(punching)이나 꼬임(twisting)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도포·도금이나 클래딩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이 류의 해설서 총설 IV(C) 부분 참조)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중량급의 형강(形鋼)[예: 대들보·빔·기둥과 장선(joist)]은 교량·건물·선박 등의 건설에 사용하며 ; 경량급의 제품은 농업용구·기계류·자동차·울타리·가구·미닫이문이나 커튼 트랙(curtain track)·우산살(umbrella rib)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물품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용접된 형강(形鋼)과 시트 파일링(sheet piling)(제7301호), 철도나 전차궤도 건설용 재료(제7302호)
- (b)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



[소호해설]

소호 제7216.10호·제7216.21호·제7216.22호·제7216.31호·제7216.32호·제7216.33호와 제7216.40호

이들 소호에서 U·I·H·L·T자 형강(形鋼 : section)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 높이는 다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U·I·H형강(形鋼) :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의 바깥쪽 표면간의 거리
- L 형강(形鋼) : 가장 큰 바깥쪽 면의 높이
- T 형강(形鋼) : 단면의 총 높이

I 형강(形鋼)[좁거나 중간의 플랜지(flange)]은 폭이 단면의 높이인 0.66mm를 초과하지 않는 플랜지(flange)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300mm 미만의 것이다.

소호 제7216.10호·제7216.21호·제7216.22호·제7216.31호·제7216.32호·제7216.33호와 제7216.40호와 제7216.50호

표면처리에 관련한 제7214호 해설규정은 이들 소호의 제품에도 적용한다.

소호 제7216.61호와 제7216.69호

소호 제7215.10호·제7215.50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72.17 -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217.2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7.3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7.90 - 기타

이 호의 선(wire)은 이 류의 주 제1호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압연(hot-rolled)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引拔 : drwaing)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그 밖의 냉간(冷間 : cold) 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 모양(정열되지 않은 나선형이나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 제시한다.

가공한(예: 곱슬곱슬하게 한 것) 선도 이 호에 분류하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직물과 같은 재료로 피복한 선으로서 철강의 심이 기본 구성요소이고 다른 재료는 단지 피복하기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며[예: 모자의 구조틀(milliners' wire) 제조용 선과 조화(造花)용 줄기나 헤어컬에 사용하는 선] 이 호에 분류한다.

선은 매우 많은 용도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철책·거즈·망·못·로프(ropе)·핀(pin)·침·공구와 스프링(spring) 제조용 등이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금속실(제5605호)과 선으로 보강한 끈과 코드(제5607호)

(b) 제7312호의 연선(stranded wire)·로프(ropе)·케이블(cable)과 이와 유사한 것

(c) 유자선(有刺線 : barbed wire) ; 울타리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꼬임 모양의 평선(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7313호)

(d) 직기용의 종광(綜光 : heald) 제조용 듀플렉스(duplex) 선으로서 매듭용의 한 끝이나 양 끝을 작은 구멍이나 올라미가 되도록 꼰 선을 인발(引拔 : drawing) 후 두 개의 선의 가닥을 접합하여 제조되는 것(제7326호)

(e) 도포된 전기 용접봉(제8311호)

(f) 침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톱니 모양의 선[전체가 강제(鋼製 : steel)인 침포](제8448호)

(g) 전기절연선[에나멜선(enamelled wire)을 포함한다](제8544호)

(h) 악기의 현(제9209호)



[소호해설]

도포·도금이나 클래딩 공정의 한 개 유형 이상을 거쳐 만든 제품에 관하여는 소호 제7210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고할 것

제3절

스테인리스강

(제7218호 - 제7223호)

총설

이 류의 주 제1호마목의 특정한 기준과 일치하는 내열강, 내(耐)크리이프강(creep-resisting steel)과 그 밖의 여러 가지의 강(鋼 : steel)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분류한다.

스테인리스강은 높은 내식성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용도에 쓰인다(예: 소음기, 촉매변환기나 변압기 탱크의 제조).

이 절에는 제7218호부터 제7223호까지에서 규정한 형태의 스테인리스강을 분류한다.

72.18 -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 기타

7218.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7218.99 -- 기타

제7206호와 제7207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19.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7219.1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9.1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19.2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7219.2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9.2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7219.32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9.33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9.34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7219.35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9.90 - 기타

제7208호부터 제7210호까지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7219.11호 · 제7219.12호 · 제7219.13호 · 제7219.14호 · 제7219.21호 · 제7219.22호 · 제7219.23호와 제7219.24호

소호 제7208.10호 · 제7208.25호 · 제7208.26호 · 제7208.27호 · 제7208.36호 · 제7208.37호 · 제7208.38호 · 제7208.39호 · 제7208.40호 · 제7208.51호 · 제7208.52호 · 제7208.53호와 제7208.54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소호 제7219.31호 · 제7219.32호 · 제7219.33호 · 제7219.34호와 제7219.35호

소호 제7209.15호 · 제7209.16호 · 제7209.17호 · 제7209.18호 · 제7209.25호 · 제7209.26호 · 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7220.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7220.2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90 - 기타

제7211호나 제7212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7220.11호와 제7220.12호

소호 제7208.10호·제7208.25호·제7208.26호·제7208.27호·제7208.36호·제7208.37호·제7208.38호·제7208.39호·제7208.40호·제7208.51호·제7208.52호·제7208.53호와 제7208.54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소호 제7220.20호

소호 제7209.15호·제7209.16호·제7209.17호·제7209.18호·제7209.25호·제7209.26호·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72.21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7213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72.22 -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 -- 횡단면이 원형인 것

7222.19 -- 기타

7222.2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30 - 그 밖의 봉

7222.40 - 형강(形鋼)

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총설 규정을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7222.20호

소호 제7215.10호와 제7215.50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제721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외과용 봉합재로 사용하는 살균한 매우 가는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 wire)은 **제외한다(제3006호)**.

제4절

그 밖의 합금강과 합금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제7224호 - 제7229호)

총설

그 밖의 합금강(alloy steel)은 이 류의 주 제1호바목에 정의되어 있고, 중공(中空) 드릴봉(hollow drill bar and rod)은 이 류의 주 제1호거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절에는 잉곳(ingot) 모양이나 중공(中空) 일차 모양의 합금강(스테인리스강은 제외), 반제품 [예: 블룸(bloom)·빌릿(billet)·라운드(round)·슬래브(slab)·시트바(sheet bar)·단조(鍛造 : forging)에 의해 거칠게 성형된 피스], 평판압연제품[코일 모양(와이드 플랫(wide flat)·와이드 코일(wide coil)·시트(sheet)·플레이트(plate)나 스트립(strip)이라고 부르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봉(bar·rod), 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이나 선(wire)을 분류한다.

이러한 모든 제품은 가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제7206호부터 제7217호까지 해설 참조).

그 밖의 합금강에 주로 존재하는 금속은 망간(manganese), 니켈(nickel), 크로뮴(chromium), 텅스텐(tungsten)[볼프람(wolfram)], 몰리브덴(molybdenum), 바나듐(vanadium)과 코발트(cobalt)이며 ; 비(非)금속(non-metal) 첨가물은 주로 규소이다. 이러한 합금 물질은 강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충격과 마손에 대한 저항성(예: 망간강) ; 전도성의 향상(규소강), 경도성의 향상[예: 바나듐강(vanadium steel)] ; 절단속도의 증가[예: 크로뮴-텅스텐강(chrome-tungsten steel)] 등이다.

그 밖의 합금강은 특수한 성질[예: 내구성, 경도(硬度)성을 증가시키는 것, 탄성, 강도]을 요하는 많은 목적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병기, 공구와 칼붙이와 기계류에 사용한다.

이 절의 합금강에는 다음 것이 포함한다.

- (1) 보통 다음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합금강과 구조용 합금강 : 크로뮴(chromium)·망간(manganese)·니켈(nickel)·실리콘(silicon)과 바나듐(vanadium)
- (2) 극히 소량의 붕소(전 중량의 0.0008% 이상)나 니오븀(niobium)(전 중량의 0.06% 이상)을 특유하게 함유함으로써 향상된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와 용접성(welding property)을 가지고 있는 합금강
- (3) 크로뮴(chromium)이나 구리를 함유하면서 내후성이 있는 합금강
- (4) 보통 실리콘(silicon)이나 알루미늄(aluminium)을 3~4% 함유하고 있는 “마그네틱(magnetic)”관 [자성(磁性 : magnetic)손실이 낮은 것]에 사용하기 위한 합금강
- (5) 주 제1호바목의 요건에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의 원소를 최소한 하나 이상 함유하고 있는 쾌삭강(快削鋼 : free cutting alloy steel) : 납, 황, 셀렌(selenium), 텔루르(tellurium)나 비스무트(bismuth)
- (6) 베어링(bearing)용 합금강[보통 크로뮴(chromium)을 함유하고 있다]
- (7) 스프링(spring)용 망간-실리콘합금강[망간(manganese)·실리콘(silicon)·크로뮴(chromium)이나 몰리브덴(molybdenum)을 함유한다]과 스프링(spring)용 그 밖의 합금강

- (8) 내충격성과 내마모성이며, 높은 망간(manganese)함량을 가지고 있는 비자성 합금강
- (9)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 다른 합금요소여부와 상관없이 몰리브데늄(molybdenum) · 텅스텐(tungsten)과 바나듐(vanadium)의 3가지 중 적어도 2가지 원소를 함유하는 것으로 합한 함유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이고 탄소의 함량이 0.6% 이상, 크로뮴(chromium)의 함량이 3%~6%인 합금강
- (10) 비변형(非變形 : non-distorting) 공구강 :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12% 이상 크로뮴(chromium)과 2% 이상의 탄소를 함유한다.
- (11) 그 밖의 공구용 합금강
- (12) 알루미늄(aluminium), 니켈(nickel)과 코발트(cobalt)를 함유하고 있는 영구 자석강
- (13) 망간(manganese)이나 니켈(nickel) 함량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는 비자성 합금강(제3절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원자로 조정봉(調整棒 : control rod)용 강(높은 붕소 함량을 가진 것)
이 절에는 또한 합금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 : hollow) 드릴봉도 포함한다(제7228호)

72.24 -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7224.90 - 기타

제7206호와 제720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72.25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7225.19 -- 기타

7225.30 - 기태[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5.40 - 기태[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5.50 - 기태[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7225.91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25.92 --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25.99 -- 기타

제7208호부터 제7210호까지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7225.30호와 제7225.40호

소호 제7208.10호·제7208.25호·제7208.26호·제7208.27호·제7208.36호·제7208.37호·제7208.38호·제7208.39호·제7208.40호·제7208.51호·제7208.52호·제7208.53호와 제7208.54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소호 제7225.50호

소호 제7209.15호·제7209.16호·제7209.17호·제7209.18호·제7209.25호·제7209.26호·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소호 제7225.91호와 제7225.92호

소호 제7210.30호·제7210.41호와 제7210.49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72.26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7226.19 -- 기타

7226.20 - 고속도강의 것

- 기타

7226.9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6.92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6.99 -- 기타

제7211호와 제7212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7226.91호

소호 제7208.10호·제7208.25호·제7208.26호·제7208.27호·제7208.36호·제7208.37호·제7208.38호·제7208.39호·제7208.40호·제7208.51호·제7208.52호·제7208.53호와 제7208.54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소호 제7226.92호

소호 제7209.15호·제7209.16호·제7209.17호·제7209.18호·제7209.25호·제7209.26호·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72.27 -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 고속도강의 것

7227.20 - 실리코망간강의 것

7227.90 - 기타

제7213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72.28 -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 드릴봉(+)

- 7228.10 - 고속도강의 봉
- 7228.20 - 실리콘망간강의 봉
- 7228.30 -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7228.40 -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7228.50 -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7228.60 - 그 밖의 봉
- 7228.70 - 형강(形鋼)
- 7228.80 - 중공(中空)드릴봉

(A) 그 밖의 봉, 형강(形鋼 : angle, shape and section)

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B) 중공(中空 : hollow)드릴봉

중공(中空) 드릴봉(hollow drill bars and rods)은 이 류의 주 제1호거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들은 드릴강(drill steel)으로도 알려져 있다.

드릴강(drill steel)은 합금이나 비합금강 빌릿(billet)에다 구멍을 뚫어 이를 재압연하여 제조한다. 횡단면은 보통 둥근 것·육각형·팔각형이나 쿼터 팔각형(사각형의 각을 잘라낸 모양의 것)이다. 제8207호에 해당하는 드릴비트(drill bit)제조용으로 강을 짧은 조각으로 절단되기도 하며 ; 이들은 구멍을 뚫을 때 멀리까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5m~6m의 길이로 사용한다. 길이를 따라 나 있는 구멍은 절단 끝 양쪽에 윤회용으로 액체를 흘러보내어 먼지의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호해설]

소호 제7228.50호

소호 제7215.10호와 제7215.50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72.29 -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 - 실리콘망간강의 것

7229.90 - 기타

제721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제 73 류

철강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주철(cast iron)”이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철[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주철(cast iron)을 포함한다]이나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제7301호부터 제7324호까지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와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서 “관(管 : tube · pipe)”과 “중공(中空)프로파일(hollow profile)”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管 : tube · pipe)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과 그 밖의 불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엮셋되어 있는 관(管)도 또한 관(管)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 모양의 관(管)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구멍을 뚫은 것·웨이스트(waste)한 것·익스팬디드(expanded)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이나 플랜지(flange)·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

(2) 중공(中空)프로파일(hollow profile)

위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중공(中空 : hollow)제품으로서 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 모양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73.01 -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 널말뚝(sheet piling)

7301.20 - 형강(形鋼)

널말뚝(sheet piling)은 롤러머신(roller machine)으로 압연(rolling)·인발(引拔 : drwaing)·압착(pressing)·프레스-폴딩(press-folding)이나 성형(forming)해서 얻은 형강(形鋼)이나 압연된 부품 [예: 리베팅(riveting)·용접·크림핑(crimping)한 것]을 조립해서 얻은 형강(形鋼)으로 구성된다. 이들 형강(形鋼)은 간단하게 결합되도록 붙이거나 측면이 세로로 나란히 세워지도록 부착구를 붙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의 형은 적어도 세로 측면상에 연결장치[예: 홈(groove)·플랜지(flange)·인터록(interlock)]를 갖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널말뚝 앵글(sheet piling angle)이나 모서리 조각(corner piece) : 이것은 모서리를 성형하기 위한 형강(形鋼)으로서 ; 이들을 성형하는데 절판(折板)의 형강(形鋼)이나 사용하는 길이만큼 절단된 형강(形鋼)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렇게 하여 만든 부분품은 앵글이 형성되도록 용접되거나 리벳(rivet)으로 연결된다.
- (2) 결합용 널말뚝 형강(形鋼)(joining sheet piling section) : 이것은 격벽을 만들기 위하여 3~4개의 팔(arms)을 갖는다.
- (3) 연결용 널말뚝 형강(形鋼)(connecting sheet piling section) : 이것은 서로 다른 모양의 널말뚝을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있다.
- (4) 널말뚝용 도관과 지주(sheet piling conduit and column) : 이것은 강제로 결합시키는 연결구가 없이 이들을 서로 접합하는 식으로 지면에 때려 박는 것이다. 널말뚝용 도관은 물결 모양의 것이며, 널말뚝용 지주는 두 개의 형강(形鋼 : section)이 함께 용접된 것으로 만들어졌다.

널말뚝(sheet piling)은 일반적으로 댐·둑·도랑과 같은 토목공사에서 모래땅·침수된 땅에 벽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용접된 형강(形鋼 : welded angle)을 포함한다. 제7216호의 해설은 용접하여 얻어진 프로파일(profile)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용접된 중공(中空) 프로파일(hollow profile)(**제7306호**)

(b) 외부연결이 가능한 “인터록”(interlock)이 없는 파일(pile)로 조립한 널말뚝(sheet piling)(**제7308호**)

73.02 -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 · 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받침목(크로스타이) · 이음매판(fish-plate) · 좌철(座鐵) · 좌철(座鐵)뺀기 · 밑판(sole plate)(베이스 플레이트) · 레일클립 · 받침판(bedplate) · 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 - 레일(rail)

7302.3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7302.4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7302.90 - 기타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 재료를 분류하며, 표준궤도(標準軌)용의 것인지를 협궤도(挾軌)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1) 철도용이나 궤도용의 **레일(rail)**: 열간(熱間) 압연에 의하여 제조한 제품이다. 이 호에는 레일(rail)와 같은 여러 가지 길이의 것을 분류하며 쌍두(雙頭)레일 · 플랜지(flange)[또는 평저(平底)]레일 · 홈이 파진 전차용 레일 · 전철용의 슬로트레일(slot rail)과 전도용(電導用)의 레일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의도한 용도(고가 운송기용 · 이동 크레인용 등)에 관계없이 철도용이나 궤도용선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레일(rail)을 포함한다. 그러나 철도나 궤도형이 아닌 레일(rail)은 **포함하지 않는다**(예: 문 미닫이용 레일과 승강기용의 레일).

체크레일(check-rail): 또한 보호 레일이나 안전 레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횡단과 커브에서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랙 레일에 고착된 것이다.

랙레일(rack rail): 급경사진 노선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긴 평행봉에다 횡단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 간격을 아주 가깝게 한 봉(rod)을 결합시킨 것인데 이 횡단으로 연결된 봉 사이의 간격은 기관차의 아래에 붙어있는 치차의 치와 맞물리게 되도록 한 것이다. 다른 종류는 이와 같이 치차와 맞물리도록 치를 가진 레일이 있다.

위의 모든 레일들은 직선 모양, 곡선 모양이나 볼트(bolt)로 결속하기 위한 구멍이 있는 것들도 있다.

- (2)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이것은 주조방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될 수도 있는 것으로 고정선로의 연결지점이나 교차지점에 사용한다.

- (3) **철강으로 만든 “받침목”(sleeper : cross-tie)**: 레일(rail)을 지지하고 평행을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보통 압연 후 최종의 모양으로 압착하여 제조하지만, 수개의 부분을 함께 용접이나 리벳팅(riveting)하여 조립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은 횡단면이 “U”자형이나 다리가 매우 짧은 Ω형을 가지며, 이들은 구멍 뚫린(천공) 것 · 펀치(punch)된 것 · 슬롯트(slot)된 것 · 체어(chair)이나 밑판(sole plate)을 붙인 것 · 하우징(housing)에 고착하기 위해 일체로 성형한 레일(rail)을 갖춘 것인지를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4) **이음매판(fish-plate)**: 열간(熱間)압연 · 단조(鍛造)나 주조에 의하여 제조한 여러 가지 모양(평판 모양 · 어깨 모양 · 각진 모양 등)의 제품으로 하나의 레일(rail)을 다음 레일에 연결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구멍 뚫은 것(천공)이거나 펀치(punched)된 것인지를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5) **체어(chair)**[보통 주철(cast iron)로 만든 것이다] : 받침목에다 쌍두레일(bull-head rail)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며 ; 이들은 코치 스크루(coach screw)나 볼트(bolt)로 단단히 부착시킨다.

체어 췌기(chair wedge) : 체어(chair)에 레일(rail)을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 · 슬리퍼플레이트(sleeper plate)]은 받침목에 평저레일(flat-bottomed rail)을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받침목을 보호하고 클램프(cramp) · 볼트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 스파이크(spike)나 용접[강(鋼)으로 만든 것인 경우]에 의하여 고정된다.

레일클립(rail clip) : 받침목에 평저레일(flat-bottomed rail)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 이들을 침목에 볼트로 조여지게 해서 레일의 평저 부분을 침목에 고정시켜 준다.

또한 이 호에는 **견고한(rigid) 철도레일 고착용 장치**도 분류하는데, 봉강을 L자형 비슷하게 구부려서 제조한 것으로 그 짧은 쪽은 레일(rail)의 플랜지(flange)를 압착하게 되고, 긴 쪽은 그 끝이 뾰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 평평하여 받침목에 미리 뚫어 놓은 구멍에 고착되게 되어있다.

여기에 더하여 **탄력성(resilient)이 있는 레일고착장치**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은 스프링성 스틸(spring steel)로 제조되고 레일(rail)을 받침목이나 밑판(sole plate)에 고정시켜 준다. 고정시키는 힘은 “제조 당시(as manufactured)”의 상태에서부터 고착물의 기하학적 편향으로 얻어진다. 패드나 절연장치는 보통 고무로 만든 것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고착물과 레일의 사이나 고착물과 받침목 사이에 끼워진다.

- (6) **받침판(bedplate)과 격재(tie)** : 레일을 평행한 위치로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어떤 특정의 스페이싱 타이(spacing-tie)와 앵글 바(angle-bar)는 다량의 병렬 목재 받침목을 볼트로 조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 받침목에 직각으로 고정시켜 어느 특정 지점에서 레일의 변형[또는 “크립(creep)”]을 방지하도록 해준다.

- (7) **그 밖의 특수화한 레일 앵커(rail anchor)** : 세로 크립(longitudinal creep)이 발생하는 경우 레일에 부착하거나 고정시키는 장치이다. 이들은 세로 이동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이나 밑판(sole plate)에 맞대어 지탱시킨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철도 선로의 건설 재료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스크루(screw) · 볼트 · 너트 · 리벳(rivet)과 스파이크(spike)(**제7317호**와 **제7318호**)
- (b) 조립된 트랙(track) · 전차대(turntable) · 플랫폼(platform)용 완충기(buffer)와 적량계(loading gauge)(**제8608호**)

73.03 -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하는 주철(cast iron)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들 주철관은 형주조(型鑄造 : casting in mould)나 원심주조 되기도 하며 ;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융(溶融)된 철을 수평 실린더에 부어 넣어 실린더를 급속도로 회전시키면 응고하는 벽에 대하여 원심적으로 작용하여 금속이 고화된다.

이들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은 직선이나 곡선으로 된 것·평평한 것·지느러미 모양이나 아가미 모양이 달린 경우도 있다. 이들은 또한 소켓(socket)·플랜지(flange)가 일체로 붙었거나 플랜지를 용접해서 붙인 것이나 나선 가공된 것도 있다. 소켓이 달린 관(socketed pipe)은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둘째 관의 끝이 들어가도록 첫째 관의 끝이 넓혀져 있다. 플랜지가 달린 관(flanged pipe)은 칼라(collar)·너트·볼트·클램프(clamp) 등에 의하여 조립시킬 수 있으며, 끝이 나선 가공되었거나 평평하게 되어 있는 관(管)은 커플링(coupling)·링이나 칼라에 의하여 조립된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개의 구멍이나 가지모양의 구멍을 갖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을 포함하며, 이들은 예를 들면, 아연·플라스틱·역청으로 피복되어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주로 상수도·하수 배출용의 압력이나 중력 배관용·흡통이나 배수관과 같은 저압가스 배관용이나 하수도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관(管)의 연결구류(제7307호)

(b) 중앙난방용 방열기용의 형강(形鋼)(제7322호)이나 기계의 부분품(제16부)과 같이 부분품으로 인정되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

73.04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 7304.11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 7304.19 -- 기타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
- 7304.22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 7304.23 -- 그 밖의 드릴파이프
- 7304.24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7304.29 -- 기타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7304.3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7304.39 -- 기타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7304.4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7304.49 -- 기타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7304.5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7304.59 -- 기타
- 7304.90 - 기타

이 호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A) 중간 제품을 열간(熱間)압연(hot-rolling)하는 방법 : 이것은 잉곳(ingot)을 압연시킨 다음 탈피시켜 할 수 있고, 빌릿(billet)이나 라운드(round)를 압연하거나 연속 주조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 공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벽두께와 바깥지름은 최종 제품보다 두껍지만 길이는 그보다 짧은 중공(中空) 블랭크(blank)를 얻기 위해서, 크로스 롤링밀(cross rolling mill)[만네스만공법(Mannesmann process)], 원판형의 밀(mill)이나 원추형의 천공(穿孔)기로 구멍 뚫는 공정
- (2) 맨드릴(mandrel)이나 플러그(plug)에 의해 열간(熱間)압연(hot-rolling)하는 공정 : 이는,
 - 베어링튜브(bearing tube)의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사진 세 줄의 롤 신장기(Assel이나 Transval)나 가이드디스크(guiding disc)를 갖춘 경사진 두 줄의 롤신장기(Diescher공법)나 경사진 세줄의 유성(遊星)식(planetary) 신장기로 ,

- 자유부유(free floating)나 반자유부유(semi floating)구속 맨드릴(restrained mandrel)에 다른 롤 세트를 갖는 연속 관 납연기(continuous tube rolling mill)(Neuval공정이나 Dalmine공정)로
- 필저밀(pilger mill)로
- 스티펠밀(Stiefel mill)로
- 일련의 롤(roll)에 블랭크(blank)를 밀어 넣어주는 푸쉬벤치(push bench)로, 또는
- 스트레치 리듀싱 밀(stretch reducing mill)로 한다. 이 경우 얻어진 제품은 완성가공된 관 튜브이다.

(B) 유리질(Ugine-Sejournet 공법)이나 다른 윤활제를 사용해서 라운드(round) 제품을 프레스(press)로 열간(熱間) 압출하는 방법. 이 제조법은 실제로 천공(穿孔)·팽창여부·압출의 후속작업을 포함한다.

앞에서 언급한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완성가공작업이 뒤따른다.

- 열간(熱間)완성가공(hot-finishing) : 이 경우에는 재가열한 후 블랭크(blank)를 사이징 밀(sizing mill)이나 스트레칭 밀(stretching mill)에 통과시키고 최종에는 스트레이트닝 밀(straightening mill)에 통과시킨다.
- 맨드릴(mandrel) 상태에서의 냉간(冷間)완성가공(cold-finishing) : 이것은 벤치(bench) 상태에서 냉간인발(冷間引拔 : cold-drawing)을 해서 가공하거나 필저밀(pilger mill)(Mannesman이나 Megaval 공법) 속에서 냉간(冷間 : cold) 압연(냉간환원)해서 가공한다. 이러한 작업은 열간(熱間) 압연(hot-rolled)했거나 압출한 관(管)을 블랭크(blank)로 사용해서 비교적 벽 두께가 얇거나[Transval 공정에서는 벽두께가 감소된 관(管)을 직접 제조하게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직경이 비교적 작은 관과 직경이나 벽두께의 허용오차가 비교적 작은 관(管)도 제조토록 해준다. 냉간(冷間) 가공법은 예를 들면, 압축공기식 잭(pneumatic jack)이나 하이드롤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용에 필요한 연마된 표면(거친 정도가 낮은 관)을 얻기 위한 호닝(honing)과 롤러 버니싱(roller burnishing)도 또한 포함한다.

(C) 주조나 원심 주조

(D) 성형용 주형 위에 올려놓은 디스크(disc)를 디프 드로잉(deep drawing) 하는 방법. 제조된 블랭크(blank)는 이후에 열간인발(熱間引拔)된다.

(E) 단조(鍛造)

(F) 봉(bar)을 기계가공하는 것[이후에 냉간인발(冷間引拔)이나 냉간(冷間) 압연(냉간환원) 작업을 하게 된다][**제7228호**의 중공(中空)드릴봉은 **제외한다**]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과의 구별에 관한 이 류 총설을 참조할 것

*
* *

이 호의 제품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역청이 조합된 유리섬유(glass wool)로 도포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지느러미 모양이나 아가미 모양이 달린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을 포함한다 [예: 세로나 가로외 핀(fin)을 갖추고 지느러미 모양이나 아가미 모양이 일체로 붙은 관(管)].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line pipe) · 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케이싱(casing) · 튜빙(tubing)과 드릴 파이프(drill pipe) · 보일러 · 과열기 · 열교환기 · 응축기 · 정련용 로(爐) · 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管) · 고압이나 중압증열기용이나 건물 내의 가스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管)이나 흑관(가스관이라 부른다)은 물론 물이나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분관용관을 포함한다.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이나 기계용의 부분품 · 볼베어링(ball bearing) · 원통형 · 테이퍼드형(tapered)이나 니들형 베어링용(needle bearing)의 링이나 그 밖의 기계용, 스카폴딩(scaffolding)용 관상의 구조물용이나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주철(cast iron)로 만든 관(管 : tube · pipe)(제7303호)과 제7305호나 제7306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管)
- (b) 주철로 만든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제7303호)와 제7306호의 철강으로 만든 중공(中空) 프로파일
- (c)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 (d)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온도조절식의 주름통과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를 포함한다](제8307호)
- (e) 전기절연도관(insulated electrical conduit tubing)(제8547호)
- (f)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제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그 밖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나 제8714호), 사이클용 안장 기둥(saddle pillar)과 프레임(제8714호)



[소호해설]

소호 제7304.11호 · 제7304.19호 · 제7304.22호 · 제7304.23호 · 제7304.24호와 제7304.29호

이 소호에는 해당되는 표준규격이나 공업규격[예: 미국 석유검정협회(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표준규격인 라인파이프(line pipe)용의 5L나 5LU와 케이싱(casing) · 튜빙(tubing)과 드릴파이프(drilling pipe)용의 5A, 5AC나 5AX]에 상관없이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

소호 제7304.31호 · 제7304.39호 · 제7304.41호 · 제7304.49호 · 제7304.51호와 제7304.59호

냉간(冷間) 가공제품과 이들 소호의 그 밖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72류의 총설 Part IV(B) 둘째문단을 참조할 것

**73.05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7305.12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19 -- 기타

7305.2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7305.39 -- 기타

7305.90 - 기타

이 호의 관(管 : tube · pipe)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管) 모양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riveting)하여 제조하게 된다.

관(管) 모양의 것은 다음과 같이 제조될 수 있다.

- 코일 모양의 평판압연제품을 프레스나 롤링머신에 의하여 세로로 길게 비연속조작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

- 코일 모양이 아닌 평판압연제품을 롤러 세트에 의하여 세로로 길게 하거나 나선형으로 연속조작하여 제조할 수 있다.

용접한 물품의 경우에 접속하는 주변 부분은 불꽃 용접되거나 전기저항이나 유도용접에 의하여 금속충전제 없이 용접되거나 금속충전제(filler metal) 및 산화방지 보호용 플럭스(flux)나 가스(gas)로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에 의해서 용접된다. 리베팅(riveting)에 의하여 만든 제품의 경우, 그 접속하는 주변 부분은 리벳(rivet)에 의하여 겹쳐서 결합된다.

이 호의 제품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역청으로 조합된 글라스 울(glass wool)로 도포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유정(油井)이나 가스 정(井)용의 케이싱·장거리 급수관용의 관(管)이나 석탄이나 그 밖의 고체 재료용의 슬러리(slurry)용 본관(本管)·파일링(piling)용이나 구조물용의 기둥은 물론 보통 링(ring)으로 보강된 수력발전용의 도관(conduit)을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제7303호·제7304호·제7306호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

(b)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c) 특정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管)

○
○ ○

[소호해설]

소호 제7305.11호 · 제7305.12호 · 제7305.19호와 제7305.20호

소호 제7304.11호 · 제7304.19호 · 제7304.22호 · 제7304.23호 · 제7304.24호와 제7304.29호의 해설 규정을 이들 소호에도 준용한다.

소호 제7305.11호

이 소호에는 강판(steel plate)으로부터 프레스(press)로 성형하거나 롤링(rolling)해서, 금속을 첨가하고 용융(溶融)당시 금속의 산화방지용의 플럭스(flux)와 함께 전기아크(electric arc)로 용접해서 제조되는 관(管)을 포함한다.

용접한 후 거기에는 솟아난 금속의 표적(bead)이 있는데, 이러면 “용접 표적(weld bead)”을 완성된 관(管)의 외면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소호 제7305.12호

이 소호에는 주로 강(鋼)제의 코일(coil)을 성형롤(forming roll)의 트레인(train)에 통과시킨 다음 금속을 첨가하지 않고 전기저항이나 유도전류로 전기 용접하는 연속성형방법으로 제조되는 관(管 : tube · pipe)을 포함한다. 용접한 후 완성된 관(管)의 외부 표면에는 금속의 표적(bead)이 솟아나지 않는다.

73.06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6.19 -- 기타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6.29 -- 기타

7306.3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6.4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6.5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7306.69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7306.90 - 기타

제7305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단조(鍛造)에 의하여 용접한 관(管 : tube · pipe)(butt용접관으로 알려져 있다)

(2) 끝부분이 봉합된 관(管) : 즉 이들 관(管)에 있어서는 그 끝 부분이 서로 상접되었거나 덮여 있으며 오픈 심(open seam) 관(管 : tube)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 길이에 걸쳐서 오픈 슬릿(open slit)를 갖는 제품은 **제7216호**, **제7222호**나 **제7228호**에 열거된 형재(形材)로 분류한다.

(3) 접속하는 끝부분이 클리핑(clipping)에 의하여 결합된 관(管)

이 호에 해당하는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어떤 관(管)은 바깥지름이나 벽두께를 감소시키고 규격의 허용오차가 비교적 적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인발(引拔)이나 압연(壓延)을 거친 것이다. 이러한 냉간(冷間)가공법은, 제7304호의 해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표면완성가공(표면연마)을 포함한다)을 허용한다.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과의 구별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할 것

*
* *

이 호에는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 파이프(line pipe)·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케이싱(casing)과 튜빙(tubing)·보일러·과열기·열교환기·응축기·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管 : tube·pipe), 고압이나 중압 증기용이나 건물 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管 : tube·pipe)이나 흑관(black tube : 가스관이라 부른다)은 물론 물이나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 이 이외에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은 자동차용이나 기계용의 부분품·자전거용 프레임·프램(pram)이나 그 밖의 구조물용·스카폴딩용(scaffolding)이나 관(管) 모양의 구조물이나 건물건축용의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한다. “오픈 심(open seam)”관(管)은 예를 들면, 금속가구용으로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플라스틱이나 역청과 조합된 유리섬유(glass wool)로 도포된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은 물론 세로형이나 가로형의 핀(fin)을 갖추고 지느러미 모양을 붙이거나 아가미 모양을 붙인 관(管)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주철(cast iron)로 만든 관(管)(**제7303호**)과 **제7304호**나 **제7305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管)
- (b) 주철로 만든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제7303호**)과 **제7304호**의 철강으로 만든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 (c)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 (d)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온도 조절식의 주름 통과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를 포함한다](**제8307호**)
- (e) 전기절연용의 도관(insulated electrical conduit tubing)(**제8547호**)
- (f)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管 : tube·pipe)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tubular section)(**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그 밖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나 **제8714호**), 사이클(cycle)용의 안장 기둥(saddle pillar)과 프레임(frame)(**제8714호**)



[소호해설]

소호 제7306.11호·제7306.19호·제7306.21호와 제7306.29호

소호 제7304.11호·제7304.19호·제7304.22호·제7304.23호·제7304.24호와 제7304.29호의 해설규정을 이들 소호에도 준용한다.

73.07 -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 주요한 연결구류

7307.11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7307.19 -- 기타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 플랜지(flange)

7307.2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 슬리브(sleeve)

7307.23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7307.29 -- 기타

- 기타

7307.91 -- 플랜지(flange)

7307.9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 슬리브(sleeve)

7307.93 --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7307.99 -- 기타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관(管 : tube)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管 : tube · pipe)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管)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管)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 · 지주와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硬質)의 관(管) · 탭 · 연결용 피스(connecting piece)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hose)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고정용이나 조임용 밴드나 칼라(hose clip)](**제7325호**나 **제7326호**).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주철(cast iron)이나 강(鋼)으로 만든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크루잉(screwing)하는 방법 ;
- 바트(butt) 용접용이나 소켓(socket) 용접용의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바트(butt)용접하는 경우에는 연결구의 끝과 관(管)의 끝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거나 다듬으며 ;
- 제거 가능한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단조(鍛造)된 칼라(collar)를 갖춘 평판 플랜지(flat flange)와 플랜지(flange) · 엘보(elbow)와 벤드(bend)와 리턴벤드(return bend) · 리듀서(reducer) · 티이(tee) · 크로스(cross) · 캡과 플러그(cap and plug) · 랩조인트 스템브엔드(lap joint stub-end) · 관(管) 모양의 레일(rail)과 건축용품의 연결구 · 오프셋(offset) · 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 · 커플링(coupling)이나 슬리브(sleeve) · 소제구용 트랩 · 니플(nipple) · 유니언(union) · 클램프(clamp)와 칼라(collar)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제7308호**)
- (b) 관(管) 연결구의 조립용으로 적합한 볼트·너트·스크루(screw) 등(**제7318호**)
- (c) 온도조절식의 주름통과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제8307호**)
- (d) 앞에서 설명된 행거·지주와 이와 유사한 것 ; 튜브 플러그(tube plug)(나선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링·혹 등을 갖춘 것)[예: 워싱라인(washing line)의 고정용의 것](**제7326호**)
- (e) 탭·콕·밸브 등을 갖춘 연결구류(**제8481호**)
- (f) 전기용 도관(conduit tubing)에 사용하는 절연조인트(**제8547호**)
- (g)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의 프레임(frame) 조립용의 연결구(**제8714호**)

73.08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 다리와 교량

7308.20 - 탑과 격자주(格子柱)

7308.3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7308.40 -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7308.90 - 기타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rod)·관(管: tube)·형강(形鋼: angle·shape·section)·시트(sheet)·판(plate)·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후프(hoop)·스트립(strip)·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이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管) 모양의 것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이 둥근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管)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protuberance)를 갖고 있다.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하거나 신축식의 지주·관(管) 모양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管) 모양의 발판과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둑(부두)과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돛대·(배와 육지사이의)트랩·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 셔터(shutter)·문·미닫이 문;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철도 건널목의 문과 유사한 방책; 온실용의 골조와 축성재배용 프레임(forcing frame);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대용량 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 rack); 금속으로 만든 판(sheet)이나 형강(形鋼)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 플랫(wide flat)”[유니버설 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스트립(strip)·봉·형강(形鋼)과 관(管)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구멍 뚫음(천공)·구부림이나 나칭(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개별로 압연한 봉을 함께 꼬아서 만든 제품을 포함하며, 이것은 또한 콘크리트 작업의 보강용이나 프리스트레스(pre-stress)용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조립된 널말뚝(sheet piling)(제7301호)

(b) 콘크리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하는 격자패널(coffering panel)(몰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

- (c)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확정되는 구조물(제16부)
- (d) 제17부에 해당되는 구조물 : 예, 제8608호의 철도와 전차용의 장비품과 부착물이나 기계식신호용 장치 ; 철도차량 등이나 자동차용의 새시프레임(제86류나 제87류)과 제89류에 해당되는 물에 뜨는 구조물
- (e) 이동성의 선반이 달린 가구(제9403호)



[소호해설]

소호 제7308.30호

이 소호는 또한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주거용(dwelling) 안전문도 포함한다.

73.09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염색가공·가스제조·양조업·증류와 정제업에서 부터 가정·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이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통 고정물로 설치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재료용(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한다)의 용기를 분류한다. 교반기·가열코일·냉각코일·전기식 부분품 등의 기계장치나 가열 혹은 냉각장치를 갖는 용기는 **제84류**나 **제85류**에 분류한다.

반면에 단순히 탭·밸브·수준계·안전밸브·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들 용기는 개방식의 것·밀폐식의 것·에보나이트(ebonite)·플라스틱이나 비철금속으로 내벽을 도포하였거나 열절연섬유재[예: 석면·슬래그 울(slag wool)·유리섬유(glass wool)]로 씌운 것이 있으며, 이 피복재는 외벽이 금속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용기를 분류하나 외벽과 내벽의 사이에 가열용이나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하게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석유와 가스저장 탱크; 맥아(malt) 제조소에서 보리를 담그기 위한 통; 액체(포도주·맥주 등)용 발효통; 여러 가지 디캔팅용 통(decanting vat)나 정화용 통; 금속의 열처리(tempering)와 소둔(燒鈍: annealing)용을 위한 통; 저수용 탱크[가정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것, 중앙난방식 장치용의 익스팬션 레저브와(expansion reservoir)도 포함한다]; 고체용 용기

이 호에는 또한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하고 구조를 갖춘 용기는 **제외한다** (**제8609호**).

73.10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 용적이 50리터 미만인 것

7310.21 -- 납땀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7310.29 -- 기타

앞 호에서는 보통 공장 등에서 고착물로 설치되는 내용적 300리터를 초과하는 용기가 해당되었지만, 이 호에는 내용적 300리터 이하의 철강 시트(sheet)나 판(plate)으로 만든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고착물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대형의 용기에는 타르드럼이나 기름드럼 ; 석유캔 ; 밀크용 통 ; 알코올·라텍스(latex)·가성소다(caustic soda)·탄산칼슘(calcium carbide)·염료나 그 밖의 화학제품용 통과 드럼 등이 있고, 소형의 용기에는 버터·밀크·맥주·사탕과자·과실과 과실주스·비스킷·차·과자·담배·궐련(cigarette)·구두약·의약품 등을 포장하여 상품으로 하기 위한 소상자·캔과 양철통 등을 포함한다.

특히 통과 드럼은 운반이나 취급이 용이하도록 테두리가 되었거나 그 밖의 것이 부착되기도 하고 보강되어지기도 한다. 모든 용기는 충전이나 비우기에 용이하도록 탭홀(tap-hole)·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장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통 등이 포함되나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가열용이나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케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비스킷통·차통·설탕통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 용기와 주방용 용기(**제7323호**)

(c) 담배케이스·화장분 콤팩트(powder compact)·공구상자와 개인이나 전문가용으로 사용하는 유사한 용기 (**제7325호**나 **제7326호**)

(d) 금고·현금상자나 증서용 상자과 이들과 유사한 것(**제8303호**)

(e) **제8304호**의 물품

(f) 장식용 상자(**제8306호**)

(g) 한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고 장치를 갖춘 용기(**제8609호**)

(h)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73.11 -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산소·아르곤·수소·아세틸렌·이산화탄소·부탄)의 운송이나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용적의 크기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어떤 용기는 고압 시험된 견고한 실린더(cylinder)·튜브·병 등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용접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상관없다(용접에 의할 경우 예를 들면, 저부에 중앙의 둥근 부분이나 전 길이를 용접하여 만든다). 그 밖에 하나의 내부용기와 하나 이상의 외부용기로 되는 용기가 있으며 이 양 용기의 사이는 절연재료가 적층되어진 것·진공으로 된 것·냉동액이 봉입되어진 것이 있고, 그래서 상압(atmospheric pressure)이나 저압 상태에서 어떤 액화가스를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호의 용기에는 밸브(valve)·탭(tap)·압력계·액면계 등의 조정용·제어용이나 측정용의 장치가 붙은 것도 있다.

어떤 용기[예: 아세틸렌(acetylene)용의 것]에는 가스 충전용 용이하게 하고 아세틸렌만을 압축할 경우의 폭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키절구어(kieselguhr)·목탄·석면 등의 불활성(inert) 다공성(多孔性) 물질을 시멘트 등의 응결제로 봉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세톤(acetone)을 침투시킨 것도 있다.

또 액체나 가스를 필요에 응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용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액화 가스가 외측용기의 내벽에 붙어있는 코일 속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대기 온도의 영향으로 기화 되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는 증기 축압기(steam accumulator)는 **제외한다(제8404호)**.

73.12 -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7312.90 - 기타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엮은 연선(stranded wire 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여러 가지 크기의 로프와 케이블을 분류한다. 방직용 섬유(아마 · 황마 등)로 만든 심(core)을 갖고 있거나 방직용 섬유 · 플라스틱 등으로 피복된 로프, 케이블이라도 본질적으로 철강으로 만든 선으로 제조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로프와 케이블(rope and cable)은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이지만,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밴드도 이 호에 포함되며, 이 밴드는 단선이나 연선을 짜서 형성된다.

이 호에는 로프, 케이블, 밴드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특정의 길이로 절단하거나 고리 · 용수철 고리 · 회전 고리 · 링 · 이음 링 · 클립 · 소켓(socket) 등과 연결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단일이나 복합 슬링(sling) · 도르래줄(strop) 등으로 구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물품들은 광산 · 채석장 · 선박 등의 권양(捲揚)용[크레인(crane) · 윈치(winch) · 활차(pulley) · 기중기(lift) 등과 함께] ; 견인용이나 예인용 ; 닻줄용 ; 전동벨트용 ; 돛대 · 철탑 등의 삭구용 · 받줄용, 방책의 스트랜드(strand)용 ; 석(石)을 톱질하는데 쓰이는 스트랜드(strand)용(보통 특수강의 세 가닥 꼬임선) 등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유자선(有刺線)과 느슨하게 꼬이고 가시가 달라지 않은 이중선으로 울타리용의 것("torsades")(**제7313호**)
- (b) 전기 절연한 케이블(cable)(**제8544호**)
- (c) **제87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brake cable), 액셀러레이터 케이블(accelerator cable)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73.13 -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線)·대·평선을 낀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낀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형태로 된 울타리용 대(hoop)와 선(wire)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정의한 선) :

- (1) 약간 느슨하게 낀 철강(iron or steel) 선으로 된 유자선(有刺線: barbed wire) : 이는 촘촘한 간격으로 스트립(strip) 모양의 금속으로 된 가시(刺)나 소형의 예리한 피스를 붙인 것이다.
- (2) 좁고 평평한 대(hoop)나 선(wire)을 일정한 간격의 치아 모양으로 만든 것(유자선의 대신으로 사용한다)
- (3) 대(hoop)나 한 가락의 평선(flat wire)을 나선 모양으로 낀 것 : 이 리본 모양의 울타리용 선은 때때로 “토세이드(torsade)”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좁은 대나 평선을 약간 꼬아서 만든 것이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가시(刺)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4) 두 줄기 철강선을 느슨하게 낀 것으로 울타리용에 명백히 사용하는 것 : 이것도 역시 “토세이드(torsade)”로 알려져 있다.

“대너트(dannert)”와 이와 유사한 철조망(이미 나무로 만들거나 금속으로 만든 지주에 마운트된 것이 있다)도 이 호에 분류하는데, 이는 군사상 목적이나 울타리용 등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용한 대(hoop)나 선(wire)은 아연 도금되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포되어 있다(예: 플라스틱으로 도포된 것).

이 호에서는 또한 아주 조밀하게 낀 연선(stranded wire)이나 케이블(때때로 울타리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제7312호)**.

73.14 -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14.14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14.19 -- 기타

7314.20 - 그릴 · 망 ·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그릴 · 망 ·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314.39 -- 기타

- 그 밖의 클로스(cloth) · 그릴 · 망 · 울타리

7314.4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314.42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314.49 -- 기타

7314.5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A)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으로 만든 선(wire)으로서, 손이나 기계로 교착(interlacing) · 교직(interweaving) · 망목(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다.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 · 메리야스 편물 · 크로세(crochet)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 그룹에는 선을 접촉하는 점에 용접시키거나 선을 추가해서 그 점을 결속한 와이어 그릴(wire grill)을 포함하며, 선이 서로 교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선(線 : wire)”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이 여러 가지 모양이고, 열간(熱間 : hot) 성형이나 냉간(冷間 : cold) 성형된 제품으로 횡단면의 치수가 16mm 이하인 것을 말하며, 압연한 선(rolled wire) · 와이어로드(wire rod)와 판으로부터 절단한 플랫스트립(flat strip)과 같은 것이 있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여러 용도에 사용한다. 예: 많은 재료의 세척용 · 건조용 · 여과용 ; 울타리 · 음식물 보호용 커버와 방충용 스크린(screening) · 기계용 안전 보호물 · 컨베이어용 벨팅(conveyor belting) · 선반 · 매트리스 · 가구류 · 체와 어레미 등의 제조 ; 콘크리트 보강용 등에 사용된다.

이들 재료는 롤 모양의 것·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 모양의 것(예: 벨트용의 것)이나 판(sheet) 모양의 것도 있으며, 특정의 모양으로 절단되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두 배 이상을 적층한 것도 있다.

(B)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은 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의 금속을 신장해서 성형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메시(mesh)를 갖는 망(network)이며 거기에는 평행형의 다른 자국으로 절단되어 있다.

이 물품은 매우 단단하고 강하며, 울타리·기계의 안전방호물용·육교나 기중기 사로(斜路)의 바닥재·여러 가지 건축 재료(예: 콘크리트·시멘트·플라스틱·유리) 등에 사용하는 와이어 그릴(wire grill)이나 구멍 뚫어진 시트를 대신하여 사용한다.

*
* *

선망류(wire netting)로 제조한 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이 호에 **제외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다른 류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의류·실내장식용품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종류의 금속사로 만든 직물(제5809호)
- (b) 선망(線網 : wire mesh)으로 보강된 플라스틱이나 석면과 선(線)으로 보강된 유리(제39류, 제68류와 제70류에 각각 해당된다) ; 브리케니온 래드(bricanion lath)접토를 결합하여 구운 선망(線網)으로 건축용에 사용하는 것(제69류) ; 보통 타르칠을 했거나 선망(線網)으로 보강된 종이로 만든 지붕용 판(제48류). 그러나 플라스틱을 가볍게 도포한 직조한 선(woven wire) 등[망목(網目 : mesh)이 충전된 것을 포함한다]과 종이로 뒷면을 붙인 것으로 시멘트, 플라스터용에 사용하는 선망(線網)과 그릴(grill)은 이 호에 분류한다.
- (c) 기계부분품으로 제조되는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예: 다른 재료와 조립한 것)(제84류나 제85류)
- (d) 수동식 체(sieve)나 에레미로 제조한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제9604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7314.12호·제7314.14호와 제7314.19호

“직조한 클로스(woven cloth)”나 두 가닥의 실이 직각으로 서로 교차되는 방직용 섬유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선 제품에만 적용한다.

클로스(cloth)는 일반적으로 평직이지만 또한 능직이나 그 밖의 직조인 경우도 있다. 위사(weft)는 경사(warp)를 전후로 횡단하여 지나가게 하는 연속된 스트랜드(strand)이다. 클로스(cloth)는 이러한 연속작동의 직조기로 제조한다. 스트랜드(strand)가 교차하는 점은 보강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별도의 스트랜드로 묶는 것]. 이러한 종류의 직물은 비교적 간격(폭)이 넓은 스트랜드로 구성되며, 스퀘어 메시 그릴(square-mesh grill)효과를 준다. 주름잡힌 여러 가지 제품은 크림프된 스트랜드(crimped strands)로 만들어지며 ; 주름(crimp)을 교차지점이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지게 서로 맞물려 연결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클로스(cloth)는 곧은 스트랜드로 직조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압착해 주며 ; 그 결과 그 교차지점에 생기는 변형된 모양은 직조를 보강해 주게 된다.

클로스는 특정의 길이나 특정의 모양으로 절단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 시트의 가장자리는 용접되거나 납땀질이 되기도 한다.

73.15 -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 롤러체인(roller chain)

7315.12 -- 그 밖의 체인

7315.19 -- 부분품

7315.20 - 스킨체인(skid chain)

- 그 밖의 체인

7315.81 -- 스테드링크(stud-link)

7315.82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7315.89 -- 기타

7315.90 - 그 밖의 부분품

이 호에는 주철(cast iron)[보통 가단(可鍛) 주철]· 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을 분류하는데 그 규격· 제법이나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상관이 없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 체인(articulated link chain)[예: 롤러체인(roller chain)· 전치상(轉齒狀) 체인과 Galle 체인]과, 마디가 없는 연접 체인(non-articulated link chain)(스테드링크(stud-link) 체인을 포함한다)[단조(鍛造: forged)· 주조(cast)· 용접(welded)· 압착(stamped)하거나 선 등으로부터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볼체인(ball chain)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자전거· 자동차나 기계의 전동용 체인
- (2) 닻과 계류용(mooring) 체인 ; 권양(捲揚)용· 견인용과 예인용 체인 ; 자동차의 스킨 체인(skid chain)
- (3) 매트리스 체인(mattress chain)· 싱크 스톱퍼(sink stopper)체인과 변기 물탱크용 체인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고리· 용수철 고리· 회전 고리· 걸쇠· 소켓(socket)· 링· 스플릿 링(split ring)과 T자 모양 피스]. 또한 명백히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체인용에 알맞게 제조한 철강으로 만든 부분품도 해당한다[예를 들면, 마디가 있는 체인용의 사이드링크(side link)· 롤러(roller)· 스피들(spindle) 등과 마디가 없는 체인용의 고리와 걸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7117호에 정한 신변장식용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체인(chain)(예: 시계용체인과 장신구용 체인)

제15부
73.15

- (b) 절단치(cutting teeth) 등을 구비한 체인으로서 체인 톱이나 절단공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제82류, 버킷(bucket)용 체인·컨베이어 혹은 체인이나 섬유의 완성가공을 위한 신장구와 같은 체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 밖의 제품
- (c) 체인이 달린 문에 쓰는 가드(door guard)(제8302호)
- (d) 측량용 체인(surveying chain)(제9015호)

73.16 -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중량의 선박, 오프쇼어 플랫폼(offshore-platform), 부표, 수로부표, 부유기뢰(浮遊機雷) 등의 계류에 사용하는 형식의 **앵커(닻)만**을 분류하며 ; 그러나 예를 들면, 석조 부분을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건물의 벽에 서까래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통 “앵커(anchor)”로 불리어지고 있는 그 밖의 물품 등은 **제외한다**.

이 닻에는 가로로 된 대(cross piece)나 닻 자루(stock)(때로는 목재로 만든 것이 있다)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닻 혀의 팔 모양 부분이 고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그래프넬(grapnel)**을 분류하는데 ; 이는 앵커(anchor)보다는 작은 것으로 닻 갈구리가 두 개보다 많게(보통 네 개) 붙어 있으나, 닻 자루(stock)는 없다. 이는 조그마한 배의 계류, 타선박 등을 잡아 끄는 것, 물에 침몰된 물체의 인양과 목재나 바위 등에 걸치게 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앵커(anchor)나 그래프넬(grapnel)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73.17 -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못(nail), 압정(tack), 스테이플(staple)(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

- (1) 필요한 두께로 선(wire)을 냉간(冷間) 압착한 것. 이러한 선으로 만든 못은 보통 평면 모양이나 원형 모양의 머리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머리 부분이 없는 것도 있으며, 일단이나 양단이 뾰족한 경우도 있다. 점차로 뾰족해지는 못과 압정은 비스듬히 자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
- (2) 필요한 두께로 철축(iron shank)을 단조(鍛造)(손이나 기계에 의해)하는 방법 : 선단을 망치로 가공하여 머리 부분을 못 만드는 기계(製釘機 : nail-making machine)에 의해 압착한다.
- (3) 판(sheet)이나 스트립(strip)을 절단하는 방법 : 필요하면 기계나 손으로 완성이공을 한다.
- (4) 못 제조 기계에 봉(bar)을 열간(熱間) 압연하는 방법 : 이때는 머리 부분과 축이 동시에 성형된다.
- (5) 다이 스탬핑(die stamping)법 : 금속의 소형 디스크(disc)에서 머리 부분을 다이 스탬핑하며 미리 조제된 축을 동시에 고정시킨다. 이 제법은 보통 가구류 제조용 못과 같은 원형의 스트랜드(strand)로 된 못을 만드는 방법이다.
- (6) 주조하는 방법

아래와 같은 여러 형태의 제품이 있다.

목수 등에 의해 사용하는 횡단면이 균일한 선으로 만든 못 ; 주형공용의 못 ; 유리 끼우기용의 못 ; 구두 수선용의 못 ; 양단이 뾰족한 고리못(전기절연되었는지에 상관없다)으로 전선·액자·울타리용 등에 사용하는 것과 스트립(strip) 상태가 아닌 그 밖의 스테이플(staple) ; 축이 꼬임상이고 머리 부분이 홈 모양으로 되지 않은 끝이 뾰족한 나사못 ; 구두수선공·가구상 등이 사용하는 압정과 머리 부분이 없는 못 ; 강력한 신발용의 구두징 ; 사진·거울·울타리용 못 ; 동물쇠용의 홈이 파지지 않은 못 ; 동물용의 홈이 파지지 않고 윤이 안 나는 장식용 못 ; 소형의 삼각못 등 [보통 양철판으로 만든 것으로 창유리를 끼우는데 사용하는 것] ; 가구제조용 장식못 ; 철도 받침목의 마크용 장식못

(B) **그 밖의 특수 형태의 못, 스파이크(spike) 등**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1) 단조(鍛造)된 고리(cramp)나 꺾쇠(dog)(일반적으로 직각으로 꾸부리고 끝을 뾰족하게 한 각이진 축으로 되어 있으며, 돌이나 거대한 목재 등을 묶는데 쓰인다) ; 대못(dog spike)[받침목에 레일(rail)을 고정시키는데 쓰인다]
- (2) 목재로 만든 부분품 조립용으로 쓰이는 일단이 톱니 모양이거나 사각을 이룬 **물결 모양 못** ; 길이의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의 것]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이 호에 분류한다.

- (3) 시트 모양 금속을 압착하거나 단조(鍛造d)한 **고리못(hook-nail)과 링 모양의 못** :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다른 끝이 직각으로 꾸부러진 것이거나 링 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여러 가지의 물품을 매다는데 사용한다.
- (4) 화판·사무 등에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제도용 핀(drawing pin)**(평판 모양이거나 원 모양의 머리 부분·(頭部) 을 갖고 있다).
- (5) **카드기(梳綿機 : carding machine)**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용 카딩택(carding tack)

이 호에 해당되는 앞에서 설명한 모든 물품은 비철금속(구리나 그 합금 **제외**)이나 그 밖의 재료(도자기·유리·목재·고무·플라스틱 등)로 만든 머리 부분(頭部) 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금속 도금한 것(구리도금, 은도금), 니스 도장한 것이나 그 밖의 재료로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스크루 훅(screw hook), 나사링, 머리 부분이 홈이 파진 뾰족한 드라이브 스크루와 뾰족하지 않는 드라이브 스크루(**제7318호**)
- (b) 구두용 보호물(포인트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 못이 부착되어 있는 그림용 고리 ; 벨트 이음쇠(belt fastener)(**제7326호**)
- (c)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머리 부분(頭部)으로 되어 있는 못·압정 등(**제7415호**)
- (d) 스트립(strip) 모양의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용·가구용·포장용)(**제8305호**)
- (e) 피아노용 췌기못(piano peg)(**제9209호**)

73.18 -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7318.12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7318.13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7318.14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7318.15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 없다]

7318.16 -- 너트(nut)

7318.19 -- 기타

-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7318.22 -- 그 밖의 와셔(washer)

7318.23 -- 리벳(rivet)

7318.24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7318.29 -- 기타

(A)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볼트(bolt)와 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 포함한다] · 금속용의 스크루(screw) 스티드(stud)와 그 밖의 스크루(screw)(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 :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 :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머리 부분(頭部)이나 스패너(spanner)로 조이기에 적합한 머리 부분(頭部)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머리 부분(頭部)이 오목하게 파일 경우도 있다. 볼트(bolt)는 너트(nut)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screw)는 거리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bolt)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 **스크루 스티드(screw stud)**[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짝막한 봉(rod)] 및 **스크루 스티딩(screw studding)**[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rod)]도 포함한다.

너트(nut) : 물건을 조일 때 볼트(bolt)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 모양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 너트, 나비형 너트 등을 포함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된다.

볼트(bolt)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blank)**도 이 호에 포함한다.

목재용 스크루(screw for wood) :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와는 구별이 되는데, 즉, 이는 차차 가늘어져서 끝이 뾰족하게 되었으며, 다른 물체에 자체가 박힐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 나선이 보다 날카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대부분 홈이 파졌거나 오목하게 파인 머리 부분(頭部)을 구비하고 있으며, 너트와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코치스크루(coach screw)(screw spike) : 목재용 대형 스크루로서 정방형이나 육각형의 홈이 파지지 않은 머리 부분(頭部)을 갖고 있다. 이는 받침목에다 철로를 고정시키는데나 연목(rafter)이나 그 밖의 유사한 무거운 목재품을 조립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셀프태핑(self-tapping)(Parker)스크루(screw)**가 포함되는데 ; 이들은 머리 부분(頭部)에 홈이 파여져 있으며, 나선 모양의 절치(切齒)가 있으며 끝이 점점 가늘어지거나 뾰족하다는 점 등에서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는 금속박판·대리석·슬레이트(slate), 플라스틱 등에 그 자체로 박을 수 있다.

이 호에는 역시 **뾰족하지 않은 모든 드라이브스크루(drive screw)(또는 screw nail)**를 분류하며, 머리 부분(頭部)에 홈이 파진 것이라면 끝이 뾰족한 물품도 역시 이 호에 포함한다. 드라이브스크루는 매우 날카로운 나선으로 되어 있으며 가끔 망치로 두드려 박을 수 있으나, 이를 뽑을 때에는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부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홈이 파지지 않은 머리 부분(頭部)이 있는 뾰족한 스크루-네일(screw-nail) (**제7317호**)
- (b) 나사식 마개(**제8309호**)
- (c) 스크루(screw)라고 불리는 나선 모양 기구로서 전동용이나 그 밖의 기구의 운동부분으로 사용하는 것 [예: Archimedian screw ; 웜기구(worm mechanism)와 프레스용의 나선 모양축 ; 밸브와 콕 클로징 기구(valve and cock closing mechanism) 등](**제84류**)
- (d) 피아노용 췌기못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악기용 나선 모양 부분품(**제9209호**)

(B) 스크루 훅(screw hook) · 스크루 링(screw ring)

이것은 다른 물품을 매달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며 단지 나선 가공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호의 고리못과 차이가 난다.

(C) 리벳(rivet)

리벳(rivet)은 나선 모양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 평판 모양, 팬(pan) 모양이나 접시 모양의 머리부분(頭部 : head)으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 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 거대 구조물, 선박과 컨테이너)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범용성의 관(管) 리벳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은 **제외한다(제8308호)**. 그러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멍이 파진 리벳은 이 호에 분류한다.

(D) 코터핀(cotter-pin) · 코터(cotter)

코터핀(cotter-pin) :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며, 스핀들(spindle) · 샤프트(shaft) · 볼트(bolt)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코터(cotter)와 테이퍼 핀(taper pin) :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지만, 코터핀(cotter-pin)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cotter-pin)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이 때에는 보통 썸(wedge)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샤프트(shaft)나 스피들(spindle)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든 경우도 있으며, 그 모양은 말편자 모양, 원추 모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

씨클립(circlip) : 갭(gap)이 있는 단순한 링(ring)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모양[특수 플라이어(plier)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새김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모양이 어떻게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 위에나 원통 모양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

(E) 와셔(washer)

와셔(washer) : 보통 작고 얇은 디스크(disc)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며 ; 이는 또한 너트(nut)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평판 모양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그로우어 스프링 와셔(Grower's spring washer), 곡선 모양의 것, 원추 모양의 것 등이 있다.



[소호해설]

소호 제7318.12호

“스크루(screw)”란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을 포함하지 않으며 ; 이들은 **소호 제7318.13호**에 분류한다.

소호 제7318.14호

이 호에는 제7318호 해설 (A) 항의 여덟째 단락에 열거한 **파커(Parker)**(self-tapping) **스크루**를 포함한다.

73.19 -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 수편침 · 돛바늘 · 코바늘 ·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7319.90 - 기타

(A) 수봉침 · 수편침 · 돛바늘 · 코바늘 ·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들과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수봉(sewing) · 수편(knitting) · 자수(embroidering) · 크로세(crochet) 가공 · 양탄자 제조 등에 사용하는 수침(needle)을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수봉침(sewing needle)** · 뜨개질바늘 · 자수바늘 · 포장용 바늘 · 매트리스용 침 · 범포제 조용 침 · 책 제본용 침 · 가구장식용 침 · 양탄자 제조용 침 · 구두용 침(구멍이 뚫린 송곳도 포함한다) · 가죽가공용에 쓰는 삼각 단을 가진 침 등
- (2) **수편침(knitting needle)**(구멍이 없는 긴 침)
- (3) **돛바늘(bodkin)**(레이스 · 끈 · 리본 등의 봉합에 쓰는 모든 종류의 것)(축구공을 꿰맬 때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 (4) **코바늘(crochet hook)**(선단을 가늘게 한 훅 모양의 바늘로 뜨개질에 사용한다)
- (5) **자수용 천공수침(embroidery stiletto)** : 자수 작업시 직물에 구멍을 내는데 사용한다.
- (6) **그물 뜨는 바늘(netting needle)** : 한쪽 끝이나 양쪽 끝이 뾰족한 것.

위의 물품 중 어떤 것은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블랭크(blank)**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침제조용의 소재가 되는 미완성의 축(구멍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구멍이 있지만 날카롭지 않거나 연마하지 않은 침 ; 아직 손잡이가 달리지 않은 자수용 천공침과 돛바늘의 날 등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침구멍이 없는 제화공용의 송곳 : 가죽가공 · 사무실 등에서 천공용에 사용하는 구멍이 있는 공구(**제8205호**)
- (b) 편물기 · 레이스 제조기계 · 자수용 기계 등의 기계용 침(**제8448호**) ; 재봉침(**제8452호**)
- (c) 픽업 카트리지용(pick-up cartridge) 침(**제8522호**)
- (d) 내과용 침 · 외과용 침 · 치과용 침 · 수의과용의 침(**제9018호**)

(B)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핀(pin) 중에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유리·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頭部)이나 그 밖의 부속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물품이 장식용의 성격을 갖지 않고 또한 본질적으로 철강으로 만든 핀(pin)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안전핀(safety pin)

(2) 보통의 핀

이 그룹에는 또한 브로치·배지[스위블 이음(swivel joint)이나 접촉부(連接部：connection)를 구비했는지에 상관없다]·모자 핀(hatpin) 등에 사용하는 선단이 뾰족한 핀의 몸체와 ; 레이블 부착용이거나 끈총집게용과 선단이 뾰족한 몸체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타이핀(tie-pin)과 배지 등·모자 핀(hat-pin)과 이와 유사한 개인용 모조신변 장식용품(**제7117호**)

(b) 제도용 핀(**제7317호**)

(c) 헤어슬라이드(hair-slide) ; 헤어핀(hair pin) ; 컬링 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것(**제8516호**나 **제9615호**)

73.20 -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 판상스프링과 그 판

7320.20 - 나선용 스프링

7320.90 - 기타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선(線)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형태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 (A) **판상(板狀)스프링(leaf-spring)**(단판이나 적층한 것) : 주로 차량(예: 기관차와 철도차량·자동차와 이륜차)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에 사용한다.
- (B) **나선 모양의 스프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 그룹이 있다.
 - (1)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helical coil spring)** : 압축스프링·인장스프링과 비틀림 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수많은 용도에 사용한다(예: 자동차용과 일반기계용).
 - (2) **볼류트 스프링(volute spring)** :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거나 타원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제조되거나 평평한 스트립으로부터 제조되며 보통 원추형이다. 이는 주로 완충기·철도 차량연결기의 버퍼(buffer)·전지가위·머리용 클리퍼(clipper) 등에 사용한다.
- (C) **평판 모양의 스프링과 평판 모양의 나선형 스프링** : 자물쇠·스프링 작동식 모터 등에 작용된다.
- (D) **디스크스프링(discs spring)과 링스프링(ring spring)**[철로의 완충기(buffer)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스프링은 U자형 볼트(bolt)(예: 판상 스프링용)나 조립용이나 부착용의 연결구류를 갖춘 경우도 있다.

스프링판(leaf for spring)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우산이나 양산의 샤프트(shaft)나 스틱(stick)에 사용하는 스프링(spring)(**제6603호**)
- (b)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제7318호**)
- (c) 다른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으로서, 예를 들면, 자동 도어 폐지기(**제8302호**)·기계류의 부분품(**제16부**)이나 **제90류·제91류** 등의 장치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을 형성하는 것
- (d) **제17부**에 해당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 토션 바(torsion bar)

73.21 -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 · 레인지(range) · 불판 · 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 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7321.12 -- 액체연료용

7321.19 --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 그 밖의 기구

7321.8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7321.82 -- 액체연료용

7321.89 --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7321.90 -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

- (i) 일정 구역의 가열 · 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 (ii) 고체 · 액체 · 기체연료 · 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 (iii)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러한 기구들은 형식에 따른 전체의 규격 · 디자인 · 최대발열량(액체연료용의 것인 경우) 노 용적(爐容積 : furnace or grate capacity), (고체연료용의 것인 경우) 연료탱크의 용적 등에 관한 하나 이상의 특징적 양식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은 해당 기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가에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한정된 공간의 난방(space heating)용 · 화로용(brazier) 등에 사용하는 형태의 스토브(stove) · 히터(heater) · 불판 등
- (2) 발열체를 결합한 가스나 오일용의 방열기(동일용도에 사용한다)
- (3) 취사용 레인지(range) · 스토브(stove)와 조리기
- (4) 발열체를 결합한 오븐(예: 고기굽기용 · 과자와 빵 제조용)
- (5) 알코올 스토브(spirit stove)나 압력 스토브(pressure stove) · 캠핑 스토브(camping stove) · 여행용 스토브(travelling stove) 등 ; 가스풍로 ; 발열체용 장치를 결합한 플레이트 가열기(plate warmer)
- (6) 불판이나 그 밖의 발열체를 갖춘 세탁용 보일러(wash boiler)

이 호에는 또한 중앙난방용 보조 보일러를 갖춘 스토브(stove)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전기식 가열을 겸한 기구[예를 들면, 가스-전기식 조리기(gas-electric cooker)]는 **제외한다(제8516호)**.

이 호의 물품에는 에나멜(enamel)을 입혔거나 니켈(nickel) 도금이나 구리 도금이 되었거나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부속품을 갖추었거나 내열 물질로 안을 댄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구용의 철강으로 만든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예: 오븐의 내부선반·조리용 관과 링·재받이·이동식 파이어 박스(fire box)와 파이어 바스켓(fire basket)·가스버너(gas burner)·오일버너(oil burner)·문·석쇠·받침대·난간·수건 걸이용 횃대·식기 놓는 선반)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7322호**의 중앙난방용 방열기·공기가열기(air heater)나 온풍배분기와 그 부분품
- (b) 가열체를 장착 하도록 맞춰져 있지 않은 오븐(oven)과 보일러(boiler)(**제7323호**)
- (c) 블로램프(blow lamp)와 휴대용 화덕(**제8205호**)
- (d) 노용버너(furnace burner)(**제8416호**)
- (e) **제8417호**에 해당되는 산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
- (f) **제8419호**에 해당되는 가열·조리·배소·증류용 등의 기계류와 이와 유사한 실험실용 장치로서 특히 다음의 것
 - (i) 전기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ii)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형식의 특수한 가열조리기구[예를 들면, 카운터식 커피 비등기; 튀김 기기(deep fat frier); 살균기·가운식 찬장·건조기와 그 밖의 증기나 간접가열에 의한 기구(가열용 코일·이중벽·이중으로 된 밑바닥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 (g) **제8516호**의 전열기구

73.22 -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 주철로 만든 것

7322.19 -- 기타

7322.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중앙난방식용 **방열기** : 즉, 플랜지(flange)나 지느러미 모양이 달린 관(管)으로 만든 형강이나 중공(中空)패널(panel)(보일러로부터 나온 물이나 증기를 순환시키게 하는 것)을 조립한 공간(space) 가열기구이다. 이러한 방열기는 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틀에 쌓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온수나 냉수를 순환시키게 하는 방열기와 가압 하에서 조절된 공기를 통하는 방출노즐을 조합한 장치도 포함한다. 이 두 개의 기구는 격자를 구비한 동일하우징에 고정된다. 이 장치는 방열기 부분이 정지되었을 때에, 조절된 공기를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호에는 공기조절기(제8415호)나 전기식 방열기(제8516호)는 제외한다.

- (2) **방열기의 전용 "형강(section)"과 그 밖의 부분품**

다음의 것은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a) 중앙난방식 보일러와 방열기를 접속하기 위한 관(管)과 연결구류(제7303호부터 제7307호까지)
(b) 방열기용의 스탠드(stand)(제7325호나 제7326호)
(c) 증기나 온수용 탭(tap)·콕(cock) 등(제8481호)

- (3) **공기가열기(air heater)**[여러 가지의 연료(예: 석탄·중유·가스)를 사용하는 것]

이들 기구(고정식이나 이동식의 것)는 주로 연소실(버너가 구비된 것)이나 화(火)적자열교환기[관(管)조립 등을 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내부에서 연소가스를 순환시켜서 발생된 열을 그 외측 표면의 순환하는 공기에 전열시키는 것]와 동력구동식 송풍기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가열기에는 보통 연소가스의 배기용 도관이 장치되어 있다.

직접 확산하게 하기 위한 열풍 발생용의 공기가열기(고정식이나 이동식의 것)는 가열하고자 하는 지역에 열풍을 분배하거나 직접 공급하기 위한 송풍장치[팬(fan)이나 송풍기(blower)]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가열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방열기(제7321호 해설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와는 구별된다.

공기가열기는 여러 가지의 부속장치 즉, 버너(burner)[펌프(pump)가 부착된 것]에 공기를 공급하는 전기식 팬·제어기기[온도조절장치(thermostat)·파이로스타트(pyrostat) 등]·공기여과장치 등을 구비한 것도 있다.

- (4) **온풍배분기(hot air distributor)** : 보통 플랜지(flange)나 지느러미 모양이 달린 관(管 : tube)을 조립한 것으로 만든 공기 가열부분과 전기식 팬(fa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기 방출구[격자나 조절 가능한 셔터(shutter)]를 갖춘 동일 하우징에 장치되어 있다.

이들 배분기는 중앙난방식 보일러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지면 위에 설치하거나 벽에 고정시키거나 천장·빔(beam)·기둥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 중 일부의 것은 가열 부분이 정지되었을 때 냉풍 분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깥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흡입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실내 온도조절 장치로 조절하면서 고압 하에서 열풍이나 냉풍을 혼합 분배하는 기기 [압축공기식 액추에이터(pneumatic actuator)에 의해 작동되는 제어밸브가 구비된 두 개의 입구 노즐과 혼합실을 동일 하우징에 장치하여 일체 구조로 된 것으로서 방열기와 동력구동식 송풍기가 구비되지 않은 것]는 **제외한다(제8479호)**.

*
* *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는 그 사용하는 장소에는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한정된 공간의 가열용(space heating)이나 여러 가지의 재료(사료·곡물 등)의 건조용의 에어히터(air heater)와 제17부의 차량용의 가열장치도 분류한다. 그러나 차량의 엔진에 의해 발생된 열을 이용하고 또한 엔진에 꼭 접속되어야만 하는 온풍배분기는 제15부의 주 제1호사목과 제17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제17부**에 분류한다.

- (5)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의 **전용 부분품(identifiable part)**[열교환기·노즐·직접확산용 도관(導管 : conduit)·댐퍼(damper)·격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것은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a) 온풍배분기를 보일러에 접속하기 위한 관(管 : pipe)과 연결구류(**제7303호에서 제7307호까지**)
(b) 팬(fan)(**제8414호**)·공기 여과기(**제8421호**)·체킹(checking) 장치와 자동제어용기기(automatically controlling appliance)(**제90류**) 등

73.23 -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 기타

7323.91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범랑제가 아닌 것

7323.92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범랑제의 것

7323.93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7323.94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범랑제의 것

7323.99 -- 기타

(A)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이나 그 밖의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 제품으로 구성되며 ; 즉, 호텔·식당·하숙집·병원·주점·병영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판(plate)·후프(hoop)·스트립(strip)·선(線)·와이어그릴(wire grill)·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의 물품은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뚜껑·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주방용품** : 소스팬·찌는 도구(시루)·가압조리구·저장용 팬·스튜팬(stew pan)·캐서롤(casserole)·큰 생선 냄비 ; 양푼 ; 프라이 팬·볶거나 굽는데 쓰이는 접시 ; 석쇠·오븐(가열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주전자 ; 여과기 ; 튀김용 바스켓 ; 젤리나 반죽용의 몰드 ; 물 컵 ; 가정용 밀크캔 ; 주방용 저장강통이나 그릇(빵상자·차 통·설탕통 등) ; 샐러드 세정구 ; 주방용 용량 측정구 ; 식기 얹는 선반·갈때기
- (2) **식탁용품** : 쟁반·접시·플레이트(plate)·수프나 채소 접시·소스접시 ; 설탕그릇·버터접시 ; 밀크나 크림통 ; 전체 접시 ; 커피통과 끓이는 기구[그러나 열원이 구비된 가정용의 끓이는 기구는 **제외한다(제7321호)**]·차통 ; 컵·잔·밑이 평평한 큰 컵 ; 삶은 달걀 받치는 컵·손가락 씻는 그릇 ; 빵과 과일용 접시와 바구니 ; 차 통과 유사한 스탠드(stand) ; 차 여과용기·양념 병 ; 칼 놓는 대 ; 와인냉각용의 버킷 등·술 붓는 받침대 ; 식탁용 냅킨 링(serviette ring)·탁자덮개를 집는 클립

- (3) **그 밖의 가정용품** :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 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버킷(bucket) · 석탄 담는 그릇 ; 물통 ; 재떨이 ; 온수용 병 ; 병 담는 바구니 ; 신발 홀 털개 ; 다리미용 대 ; 세탁물 · 과일 · 채소용 등의 바구니 ; 편지함 ; 옷걸이 · 구두의 끈 ; 도시락용 상자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열거된 제품의 철강으로 만든 부분품도 포함한다. 즉, 뚜껑 · 그림 · 손잡이 · 압력솔용의 **부분품** 등

(B) 철강의 울 ;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철강의 울(iron or steel wool) : 아주 섬세한 선(線)이나 스트립(strip)을 서로 엉키게 짜여 있고, 보통 소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꾸러미 모양으로 제조한다.

용기 세정용구 ·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 글러브(glove) ·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 선(線) · 스트립(strip) · 강(鋼)의 울(wool)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것으로 손잡이가 구비된 경우가 있으며 ; 이들 물품이 본질적으로 금속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섬유재료로 짜여 졌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철강의 울은 용도가 다양하지만, 그 외 이들 물품은 주로 가정용에 사용한다(예: 주방용품이나 위생용품의 세정 · 금속제품의 연마 · 마루바닥 보호용품 · 그 밖의 목재 마루덮개와 그 밖의 목재용품).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7310호**의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 (b) **제7321호**에 분류하는 스토브(stove) · 불판 · 부엌용 레인지(range) · 조리기 · 가열기구 등
- (c) 휴지통(경우에 따라 **제7325호**나 **제7326호**)
- (d) 공구의 특성이 있는 가정용품, 예: 모든 종류의 삽 ; 마개 뽑는 기구 ; 치즈 분쇄기 등 ; 라드를 끼워 넣는 바늘 ; 캔 따는 기구 ; 건과 깨는 기구 ; 병마개 따는 기구 ; 헤어컬링아이론 · 프레싱아이론 ; 불집게 ; 달걀을 저어 거품을 일으키는 기구 ; 와플(waffle) 굽는 틀 ; 커피분쇄기 · 향신료 분쇄기 ; 육절기 ; 과즙 짜내는 기구 · 채소용 압축기 · 채소를 잘게 찌는 기구(**제82류**)
- (e) **제8211호**에서 **제8215호**까지에 해당되는 칼붙이(cutlery)와 · 스푼 · 포크 · 국자 등
- (f) 금고 · 스트롱박스(strong box) · 현금함(cash box)과 증서함(deed box)(**제8303호**)
- (g) 장식품(**제8306호**)
- (h) 가정용의 저울(**제8423호**)
- (ij) **제85류**에 해당되는 가정용 전기기기(특히 **제8509호**와 **제8516호**의 기기)
- (k) **제94류**에 해당되는 소형의 매달 수 있는 고기찬장과 그 밖의 가구
- (l) **제9405호**의 조명기구
- (m) 수동식의 체(**제9604호**) · 담배용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제9613호**) ·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vacuum flask)와 그 밖의 진공용기

73.24 -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목욕통

7324.21 --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7324.29 -- 기타

7324.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판(plate)·후프(hoop)·스트립(strip)·선(線)·와이어 그릴(wire grill)·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으로 제조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단조(鍛造: forging)·천공(穿孔)·압착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다른 재료로 된 뚜껑·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욕조·비데(bidet)·좌욕통·발씻는 대야·싱크·세수대야·화장용 세트; 비누집시와 스폰지 바구니; 세정기(douche) 캔·위생통·소변기·요강·침실용 변기·수세식 변기와 수세식 물통(기계장치·타구·화장지홀더를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7310호**의 캔,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b) **제94류**에 해당하는 소형의 벽에 거는 의약품과 화장품 캐비닛과 그 밖의 가구

73.25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 기타

7325.91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7325.99 -- 기타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all cast article)**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상하수도 등의 인스펙션 트랩(inspection trap)·그레이팅(grating)·드레인 커버(drain cover)와 그 밖의 유사한 주조품 ; 소화전의 지주와 커버; 분수식 음료수 공급장치 ; 우편함·화재경보용의 지주·배 매는 기둥 등 ; 흡통과 흡통 주둥이 ; 광산용 튜빙(mine tubing) ; 연마용 밀이나 분쇄용 밀의 볼(ball) ;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야금(冶金)용의 도가니 ; 균형추(counterweight) ; 인조의 꽃·잎 등(**제8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수은용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주조 이외의 공정[예: 소결(燒結)방법]으로 얻는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종류의 물품(**제7326호**)

(b)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조각상·꽃병·항아리와 십자가(**제8306호**)

73.26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7326.19 -- 기타

7326.20 -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7326.90 - 기타

이 호에는 단조(鍛造)·편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편자;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걸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나무오르기용 철제품; 비기계식의 통풍기; 베네치아 블라인드(Venetian blinds); 통에 사용되는 바인딩 후프; 전선용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bracket)]; 인슐레이터 체인(insulator chain)용의 지주나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shackle)·익스텐션(extension)·접속용의 스테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鋼球)(제84류의 주 제6호 참조); 울타리용의 기둥(柱)·텐트용 지주·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말뚝; 정원 울타리용의 후프(hoop)·수목과 스위트 피이(sweet pea)용 등의 시렁(trainer); 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걸속시키는 조임쇠; 타일(건축용으로서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홈통;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걸속용 밴드나 칼라(hose clip);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지주·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管) 모양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든 클램프(clamp) 그 밖의 기구는 **제외한다**); 용량 측정구(가정용의 것은 **제외한다-제7323호**); 씌움고리(thimble); 도로용 스테드(road-stud); 단조(鍛造)된 혹(예: 크레인용); 여러 가지 용도의 스냅 혹(snap hook); 사다리; 가대(trestle); 주물의 주형용 지지구(주형의 뜻은 **제외한다. 제7317호** 참조); 철강의 조화(造花)나 잎(그러나 **제8306호**의 제품과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 (2) 선(線)으로 만든 제품: 즉 닷·올가미·쥐닛·뱀장어 잡는 통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나 트윈 와이어(duplex or twin wire); 동물용 고삐; 매트리스 혹(mattress hook)·정육점용 혹(butchers hook)·타일용 행거(tile hanger) 등; 휴지통
- (3)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 예를 들면,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않는 것(제4202호 해설 참조); 식물학자 등의 수집용과 표본용 케이스·장신구 상자; 화장품용이나 분용 상자나 케이스; 쥘렌 케이스(cigarette case)·담배 상자·구중제갑(口中香錠: cachou box) 등. 그러나, **제7310호**의 용기·가정용 용기(**제7323호**)·장식용의 것(**제8306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진공 컵홀더(흡착그립)[물품을 이동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물품(특히 유리제 기구)에 일시적으로 부착시키게 되는 기반·손잡이와 진공레버·고무원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鍛造物)(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鍛造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 (a) 제4202호의 물품
- (b) 제7309호나 제7310호의 저장용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 (c) 제7323호의 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d) 철강으로 만든 주조제품(제7325호)
- (e) 사무용품. 예: 북엔드(book end)·잉크 스탠드(ink-stand)·펜 놓는 접시(pen tray)·압지(押紙)의 스탠드·서진(書鎮)과 스탬프 스탠드(stand)(제8304호)
- (f)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조각상·꽃병·항아리와 십자가(제8306호)
- (g) 상점·공장·창고 등에서 영구 설비로 비치되는 선반(제7308호)과 제9403호의 선반식으로 된 가구
- (h) 직물제나 종이제의 램프 갓 제조에 사용하는 철선 골격 프레임(skeleton wire frame)(제9405호)



[소호해설]

소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

이들 소호의 제품들은 단조(鍛造)나 스탬핑(stamping) 후에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

거친 버링(burring)·그라인딩(grinding)·해머링(hammering)·치출(chiselling)이나 필링(filing)에 의한 버어(burr)·돌출과 그 밖의 스탬핑(stamping) 결함의 제거 ; 산(酸)침지법(acid dipping)에 의한 서냉(徐冷) 제거 ; 간단한 샌드블라스팅(sand-blasting); 금속의 결함 발견만을 위하여 거칠거칠하게 하거나 거칠게 표백하거나 그 밖의 처리 ; 녹(rust)이나 그 밖의 형태의 산화(oxidation)로부터 제품들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한 흑연(graphite)·오일·타르·연단(鉛丹 : red lead)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들의 거칠게 도포처리·상표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 : inscription)을 표시하는 ; 스탬핑(stamping)·펀칭(punching)·프린팅 등

제 7 4 류

구리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정제한 구리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그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은 (Ag)	0.25
비소 (As)	0.5
카드뮴 (Cd)	1.3
크로뮴 (Cr)	1.4
마그네슘 (Mg)	0.8
납 (Pb)	1.5
황 (S)	0.7
주석 (Sn)	0.8
텔루륨 (Te)	0.8
아연 (Zn)	1
지르코늄 (Zr)	0.3
그 밖의 원소*	각각

* 그 밖의 원소의 예: 알루미늄 · 베릴륨 · 코발트 · 철 · 망간 · 니켈 · 규소

나. 구리합금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

다. 모합금(master alloy)

“모합금(master alloy)”이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그 밖의 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그 밖의 합금을 제조할 때 첨가제나 비(非)철금속을 야금할 때 탈산제·탈황제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동은 제2853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으며,
 - 니켈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이며[참조 :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 미만인 것[참조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나.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 다만,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아연의 함유량이 주석의 함유량보다 초과될 수 있으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다.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구리-니켈 및 아연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니켈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다[참조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라. 구리-니켈의 합금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

총설

이 류에는 구리·구리합금과 이들로 된 특정 제품을 분류한다.

구리는 여러 가지 광석(제2603호의 해설 참조)에서 채취되며, 또 천연 상태에서 금속으로부터 만들어 내거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으로부터의 회수에 의하여 제조한다.

구리는 황화광에서 건식 제련(dry extraction process)에 의하여 제조되며, 이 경우 가루 상태의 정광(concentrated ore)을 필요한 경우 여분의 황을 제거하기 위해 배소(焙燒 : roasting)하고 나서 **구리 매트(matte)**나 레굴루스(regulus)를 생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용련(smelted)한다.

일부 경우, 정광은 사전에 배소(焙燒)하지 않고 공기나 산소 플래시(flash) 용광로에서 용련된다("flash smelting").

매트(matte)는 철과 황의 대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로에서 처리되어 "블리스터 구리(blister copper)"(그것이 거칠고 수포상의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을 산출한다. 블리스터 구리(blister copper)는 정련구리(fire-refined copper)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사로(reverberatory furnace)에서 정련이 되며, 필요한 경우 전기분해(electrolysis)에 의해서 추가적인 정련을 할 수도 있다.

산화광(oxide ore), 그 밖의 광석과 잔유물(residu)은 습식법(leaching)으로 제련된다(제7401호의 해설 참조).

*
* *

구리는 연성(延性)과 가단성(可鍛性)이 우수하며 ; 은 다음으로 가장 좋은 열과 전기의 도체이다. 순수한 상태의 구리는 특히 전기용의 선(wire) 모양이나 냉동기 구성요소로서 코일(coil) 모양이나 판(plate) 모양이지만, 일반용으로는 합금 상태로 사용한다.

*
* *

제15부(이 부의 총설 참조) 주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리로 분류하는 **구리-비(卑)금속합금**은 다음과 같다.

(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brass)**][소호주 제1호가목 참조] : 구리와 아연이 여러 비율로 합금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의 황동은 많은 용도에 쓰이고 ; 길딩메탈(gilding metal : tombac)은 특히 모조 신변장식용품과 세공품의 제조에 쓰인다.

구리-아연의 합금은 다른 원소를 소량 함유함으로써 특수 황동이 되는데, 이는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 특수황동에는 신장성이 높은 황동(대개 망간청동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선박건조용의 것), 납 첨가 황동, 철 첨가 황동, 알루미늄(aluminium) 황동과 실리콘(silicon) 황동을 포함한다.

- (2) 구리와 주석의 합금[**청동(bronze)**][소호주 제1호나목 참조] : 때로는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원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청동에는 화폐 주조 청동 ; 경질(硬質)청동[기어링(gearing)·베어링(bearing)·그 밖의 기계부분품 제조용] ; 벨메탈(bell-metal) ; 조상(彫像)용 청동 ; 베어링(bearing)용 납 첨가 청동 ; 인청동(또는 탈산 청동)으로 스프링(spring)이나 필터(filter)나 스크린(screen)용 등의 직조한 와이어 거즈(wire gauze) 제조용 등을 포함한다.
- (3) 구리-니켈(nickel)-아연의 합금[**양백(nickel silver)**][소호주 제1호다목 참조] : 이것은 좋은 내식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통신장비(특히 전화산업)에 사용하며 ; 그 외의 용도로는 기구부분품용 비품, 탭(tap)과 고품질 도관용 하드웨어(hardware), 슬라이드 파스너(slide fastener), 클램프(clamp)·스프링(spring)·접속기·소켓(socket) 등과 같은 전기적 분야에의 응용, 장식용과 건축용 금속 세공품, 화학품과 식품가공 장비용 등과 같은 용도가 있다. 이들 합금의 특정 규격의 것은 식탁용품 등의 제조에 쓰인다.
- (4) 구리-니켈(nickel)의 합금[**백동(cupro-nickel)**][소호주 제1호라목 참조] : 이것은 소량의 알루미늄(aluminium)이나 철을 흔히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수에 침식 당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는 합금의 대표적 품종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선박이나 조선용 기기, 특히 선박 등의 콘덴서(condenser)와 파이프(pipe) 그리고 주화(硬貨 : coin)와 전기저항체의 제조에 널리 쓰인다.
- (5) **알루미늄(aluminium) 청동** : 주로 구리와 알루미늄(aluminium)으로 된 합금으로, 강도·내식성과 견고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쓰인다.
- (6) **베릴륨구리(beryllium-copper)**[베릴륨 청동이라고도 부른다] : 주로 구리와 베릴륨(beryllium)으로 되는 합금이다. 견고성, 강도, 내식성이 우수하여 여러 가지의 스프링(spring), 플라스틱용의 몰드, 저항용접용 전극과 방폭용(non-sparking) 공구의 제조에 쓰인다.
- (7) **구리-규소 합금** : 주로 구리나 청동과 규소로 구성되는 합금으로 고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하여, 저장용 탱크·볼트·파스너 등의 제조에 쓰인다.
- (8) **크로뮴구리** : 주로 저항용접용 전극의 제조에 쓰인다.

*
* *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A) 구리의 매트(matte)와 그 밖의 구리 야금(冶金)의 중간제품, 구리의 괴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
- (B) 구리 가루와 플레이크(flake)(제7406호)
- (C) 제7403호의 구리를 일반적으로 압연, 압출, 인발(引拔)이나 단조(鍛造)하여 얻어진 물품(제7407호부터 제7410호까지)

제15부
제74류

(D) 제7411호부터 제7418호까지에 열거된 여러 가지 제품과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구리 제품을 분류하는 제7419호의 그 밖의 제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의하여 분류하는 제품, **제82류·제83류**에 분류하는 제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구리의 물품과 구리의 제품은 성질과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이들 처리는 일반적으로 제72류의 총설에 기재한 처리방법과 같으며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복합물(composite goods)의 분류, 특히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의 분류는 제15부 총설에 설명되어 있다.

74.01 -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A) 구리의 매트(matte)

이것은 매트(matte)의 표면에 뜨는 맥석(gangue)과 그 밖의 슬래그(slag) 상태의 금속에서 황화구리를 분리하기 위하여 배소된(roasted) 황화동광을 용융하여 얻는다. 매트는 주로 구리·철의 황화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흑색이나 갈색의 알갱이[용융(溶融) 매트를 물 속에 쏟아서 얻어진다]이나 (가공하지 않은)덩어리로, 둔한 금속 광택이 있는 외관을 갖고 있다.

(B) 시멘트동(침전동)

시멘트동(침전동)은 침전법, 즉 어떤 배소광이나 잔유물을 침출하여 얻은 수용액에 철을 첨가하는 방법에 의해 얻는 생산품인데, 산화물과 불용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미세한 흑색 가루이다. 이것은 정제하지 않는 상태로 선체 오염방지 페인트와 농업용 살진균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구리의 매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투입되어지는 충전제로 첨가된다.

시멘트동은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제7406호의 구리 가루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74.02 -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 (1) **흑동(black copper)** : 이 물품은 산화구리광이나 불순한 구리 스크랩(scrap)을 블라스트노(blast furnace)내에서 용해하여 제조하는 불순한 형태의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 구리의 함량은 중량비로 각양각색이나 보통 약 60%~85% 정도이다.
- (2) **블리스터구리(blister copper)** : 이 물품은 용해된 구리 매트에 공기를 불어 넣어 제조하는 불순한 형태의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 변환과정에서 황·철과 그 밖의 불순물은 산화된다. 구리의 함량은 보통 중량비로 약 98%이다.
- (3) **전해(電解)정제용의 구리 양극**

완전히 용융하여 부분적으로 정제한 구리는 다시 전해정제용의 양극으로 구조된다. 양극은 보통 슬래브(slab) 모양이며, 전해정제탱크에 매달기 위한 두 개의 돌출부(lug)를 갖는다. 본품과 **전기구리도금(electro-copper-plating)용 양극(제7419호)**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74.03 -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정제한 구리

7403.11 -- 음극과 음극의 형재

7403.12 -- 와이어바(wire-bar)

7403.13 -- 빌릿(billet)

7403.19 -- 기타

- 구리합금

7403.21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7403.22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7403.29 --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정제한 구리의 괴와 이 류의 주 제1호가목과 제1호나목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구리 합금을 분류한다.

정제한 구리(구리의 함량이 중량으로 최소한 99.85%) : 전해정련·전해추출·화학적 정련과 건식정련에 의하여 제조한다. 그 밖의 정제한 구리(구리의 함량으로 최소한 97.5%)는 보통 이 류의 주 제1호가목의 표에 표시된 최대의 제한 함량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요소를 앞에 설명한 정제한 구리와 합금하여 제조한다.

정제한 구리(refined copper)는 재용해용의 잉곳(ingot)이나 잉곳바(ingot-bar)(예: 합금제조용의 것)·와이어바(wire-bar)·압연용의 슬래브·빌릿(billet)(횡단면이 원형의 것을 포함한다)·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압연·압출·인발(引拔)이나 주조에 의해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선(wire)·관(管) 그 밖의 제품] 제조용의 것으로 주조된다.

전해 정제 구리(electrolytically refined copper) : 때로 판(plate)이나 시트(sheet)로 구성된 음극(cathode) 형태로 제시하는데, 이 음극은 모판(original starting sheet)을 전해정제탱크에 걸어주었던 두 개의 루프(loop)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나 그 루프를 베어낸 상태나 섹션(section) 모양으로 절단한 상태로 제시한다.

정제한 구리(refined copper)에는 또 주로 합금용의 **숏(shot)** 모양으로 한 것과 연마용의 가루로 한 것이 있으나,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는 **제7406호**에 분류한다.

더구나 이 호에는 주조나 소결(燒結)된 슬래브(slab)·봉(bar·rod)·잉곳(ingot) 등을 분류한다. 다만, 제조 후에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주로 산화구리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나 상부표면을 제거하기 위한), 셰이빙(shaving)·칩핑(chipping)·연마(grinding) 등(세팅이나 그 밖의 주조 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과 같은 것 이외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검사목적상(품질관리) 하나의 표면에 대해 기계적 처리가 된 것으로 **한정한다**.

소결(燒結)제품은 구리의 가루, 구리합금의 가루나 구리의 가루를 다른 금속 가루와 혼합하여, 이를 압축하고 소결(燒結)[금속의 용융점(fusion point) 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제조한다. 소결(燒結)한 상태에 있어서는 소결(燒結)품이 다공(多孔)성이며 강도가 약하여, 유용한 밀도로 만들기 위하여 보통 압연·압출·단조(鍛造) 등의 가공이 행해진다. 이들 가공되어진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제7407호, 제7409호**).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선 인발 스톡(wire drawing stock)[와이어로드(wire-rod)]나 선 인발 관(wire drawing tube)으로 변환시키는 기계에 삽입하는 것을 단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끝부분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wire-bar)나 빌릿(billet)을 포함한다.

제조 후의 가공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이 호에 해당하는 주조된 봉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제트(jet)”라고 칭하는 물품(특수 주형에 의하여 횡단면이 원형·사변형이나 육각형의 모양으로 정밀 주조한 것으로서 보통 길이가 1미터 미만의 것)
- (2) 연속 주조법으로 제조한 물품[용융(溶融) 금속을 수냉(水冷)한 주형에 연속 주입함으로써 급속히 고체화시킨 것]

“제트(jet)”와 연속 주조법으로 제조한 봉은 모두 압연, 인발(引拔)이나 압출된 봉으로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74.04 -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관한 규정은 **제2620호**에 분류하는 구리 슬래그(slag)·회(ash)와 잔재물을 **제외하고는** 이 호에 준용된다. 이 호의 구리 웨이스트는 구리의 인발(引拔 : drawing)에서 발생한 슬러지(sludge)를 포함하는데, 주로 구리 가루와 인발(引拔)할 때 사용한 윤활제가 혼합되어 있다.

이 호에는 잉곳(ingot)이나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한 피 모양의 주조물 (**제7403호**)을 **제외한다**.

74.05 -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모합금(master alloy)은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다른 원소와의 합금(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조성으로 보아 보통 금속가공용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황동·청동이나 알루미늄 청동에 이들 합금보다도 녹는 점이 높은 다른 원소나 산화되기 쉬운 원소(예: 알루미늄, 카드뮴·비스와 마그네슘)나 용융(溶融 : fusion) 온도에서 승화되기 쉬운 원소를 첨가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합금을 제조할 때 탈산용·탈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원소(예: 칼슘)를 첨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구리는 다른 원소에 대한 용제(solvent)나 희석제(diluent)로서의 작용을 하며, 모합금(master alloy)의 용융점(溶融點)이나 산화나 승화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리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러한 금속은 그 합금(alloy)에 유입되어 있는 다른 원소를 부적절하게 희석시킨다. 이들 물품에 들어있는 구리의 함량은 보통 30%부터 90% 까지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 호에서는 구리-니켈(nickel)합금을 **제외**[모합금(master alloy)용으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하는데, 그 이유는 구리-니켈(nickel)합금은 어떠한 비율로 되어 있더라도 유용하게 가단(可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합금(예를 들면, 망간동과 실리콘합금)은 구성금속의 존재 비율에 따라서 가단성 유무가 좌우되는데 ; 그러한 경우에는 합금에 유용한 정도의 가단성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모합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알루미늄(aluminium)동·베릴륨(beryllium)동·붕소(boron)동·카드뮴(cadmium)동·크로뮴(chromium)동·철동·마그네슘(magnesium)동·망간(manganese)동·몰리브덴(molybdenum)동·규소동·티탄(titanium)동이나 바나듐(vanadium)동

모합금은 보통 부서지기 쉬운 소형의 블록(block) 모양, 혹은 케이크 모양이나 약한 스틱(stick)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외관상 조(crude)주조품이다.

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인동(copper phosphide : phosphor copper)은 **제2853호**에 분류한다.

74.06 -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7406.20 -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이 호에는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한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를 분류한다 [제7401호에 해당하는 흑색가루인 시멘트동(침전동)은 제외한다]. 또 제15부의 주 제7호 규정을 전제로 구리의 가루와 다른 비(卑)금속 가루와의 혼합물[예: 구리 가루와 주석 가루의 단순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청동가루(bronze powder)”]도 포함한다.

구리의 가루는 주로 전착법(電着法)이나 분무법[용융(溶融 : molten) 금속의 세류(細流 : thin stream)를 물·증기·공기·그 밖의 가스의 고점도 크로스 제트(cross-jet)에 주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다.

위에 설명한 주된 두 가지 제법 외에도 구리의 가루는 미세한 분말로된 산화물의 가스 환원, 용액의 침전이나 고체를 잘게 부수어 소규모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층상 조직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는 보통 박(箔)을 잘게 부수어 제조한다. 층상의 형태인지는 플레이크(flake)의 경우 육안이나 확대경에 의하여, 순수한 가루의 경우에는 현미경에 의하여 관찰할 수 있다.

제조방법에 따라 입자의 크기와 모양[최소 불규칙한 모양·구(球) 모양이나 층 모양 조직]의 특징이 결정된다. 층 모양 조직의 가루는 때로 연마되지만 그 조제과정에서 사용하는 그리지(greasy)나 왁스(wax)[예: 스테아린산(stearic acid)과 파라핀 왁스(paraffin wax)]의 흔적이 남는 것도 있다.

가루는 압축과 소결(燒結)에 의하여 베어링(bearing)이나 부싱(bushing)과 그 밖의 많은 기계 부품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또 화학용이나 야금(冶金)용의 시약으로서, 납땜용과 용접용의 물품에 특수 시멘트 제조에 전기도금용 기본 재료로서 비(非)금속 표면의 도장용에 쓰인다. 플레이크(flake)는 주로 잉크와 페인트를 제조할 때 금속안료로 사용한다. 또 플레이크(flake)는 그들이 달라붙을 바니시(vernish)가 도장된 표면에 직접 흡착(吹着)시키는 방법으로 금속성 착색물 질로서 직접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때로는 “청동(bronze)”이나 “금(gold)”으로 알려진 것이며 페인트 조제에 사용하는 특정한 가루와 플레이크(flake) 가루. 그러나 실제 이들은 안티모니염·이황화석 등과 같은 화학적 화합물이다(제28류, 조제 페인트 모양이면 제32류).
- (b) 착색제, 페인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되도록 조제한 가루와 플레이크(flake)[예: 그 밖의 착색제와 혼합한 것, 점착제나 용제로 서스펜션(suspension)·디스퍼션(dispersion)이나 페이스트(paste)가 되도록 조제한 것](제32류)
- (c) 제7403호의 구리의 쏘(shot)
- (d) 구리의 박(箔)을 절단한 스팅글(spangle)(제8308호)

74.07 -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 정제된 구리로 만든 것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7.29 -- 기타

봉(bar·rod)은 제15부 주 제9호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파일(profile)**은 제15부 주 제9호나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직선화(straightening)나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그 밖의 공정에 의한 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 후)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 천공(穿孔)·편치(punch)·트위스트(twisted)·크림프(crimped)하는 것]. 또한 이 호에는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압출법에 의해 얻어진 지느러미나 아가미관(管) 포함]도 포함한다. 그러나 용접에 의해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부착된 관(管)과 파이프는 **제외한다**(보통 **제7419호**).

주조에 의해서 얻어진 봉[소위 “제트(jet)”라 하는 것과 연속 주조한 봉을 포함한다]이나 소결(燒結: sintering)에 의해서 얻어진 봉은 제조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상의 추가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해서 제7403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가공된 경우, 그로 인해 이들이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와이어바(wire-bar)나 빌릿(billet)을 예를 들면, 선 인발 스톡(wire drawing stock)[와이어로드(wire-rod)]이나 선 인발 관(wire drawing tube)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기계에 삽입하는 것을 단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끝부분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7403호**에 분류한다.

74.08 - 구리의 선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408.19 -- 기타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8.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08.29 -- 기타

선(線 : wire)은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 정의하고 있다.

선(線)은 압연·압출이나 인발(引拔)에 의해서 얻어지며, 코일 모양으로 제시한다. 제7407호 해설의 두 번째 문단을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외과용 봉합재로 사용하는 살균된 매우 미세한 상태의 청동선(**제3006호**)

(b)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

(c) 구리의 선으로 보강한 끈이나 코드(**제5607호**)

(d) **제7413호**에 해당되는 연선(stranded wire), 케이블(cable)과 그 밖의 물품

(e) 도포한 용접봉 등(**제8311호**)

(f) 전기절연한 선(線 : wire)과 케이블(cable)[에나멜(enamel) 선을 포함한다](**제8544호**)

(g) 악기용의 현(**제9209호**)

74.09 -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 코일 모양

7409.19 -- 기타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 -- 코일 모양

7409.29 -- 기타

-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 -- 코일 모양

7409.39 -- 기타

7409.4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09.90 -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판(plate)과 시트(sheet)는 보통 제7403호의 생산품을 열간(熱間) 압연이나 냉간(冷間)압연하여 얻으며 ; 스트립(strip)은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plate)과 시트(sheet)를 절단하여 얻는다.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절단한 것·구멍 뚫은(천공) 것·물결 무늬 모양의 것·리브(rib)를 붙인 것·홈이 파인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부조 모양을 붙인 것·변을 둥글게 한 것]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제15부 주 제9호라목].

0.15mm의 한계 두께는 바니시(vernish) 등의 도장물의 두께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0.15mm를 초과하지 않는 두께의 박(箔 : foil)(**제7410호**)

(b) 구리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419호**)

(c) 전기 절연한 스트립(strip)(**제8544호**)

74.10 -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0.1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뒷면을 붙인 것

7410.2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0.2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mm이하인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mm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모조의 금을 입하는데 사용하는 제일 얇은 박(箔)은 매우 연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이의 시트에 끼워 넣은 소책자 상태로 되어 있으며 ; 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판지·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천공·도장(금도금·은도금·바니시도장 등)·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0.15mm의 한계 두께에는 바니시(vernish)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종이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a) 스탬프용의 박(箔)(stamping foil)[블로킹 박(blocking foil)으로 알려진 것] : 구리의 가루와 젤라틴(gelatin), 글루(glue), 그 밖의 결합재로 응집시킨 것이나 구리를 종이·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부착시킨 것으로서, 책표지·모자용 밴드 등을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것(**제3212호**)
- (b) 인쇄를 통해 개별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쇄된 구리 박(箔)의 레이블(label)(**제4911호**)
- (c)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
- (d)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두께가 0.15mm를 초과하는 것)(**제7409호**)
- (e)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모양의 박(箔)(**제9505호**)

74.11 -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11.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11.29 -- 기타

관(管 : tube · pipe)은 제15부 주 제9호마목에 정의하고 있다.

제7304호부터 제7306호까지의 해설은 이 호의 범위와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해서 준용한다.

구리로 만든 관(管)은 이음매(계목)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나, 때때로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를 용접이나 뿔질에 의해서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음매가 없는 관(管)[무계목(無繼目)관]은 빌릿(billet)을 튜브 블랭크가 되도록 꿰뚫거나 압출을 하여 제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튜브 블랭크는 열간(熱間) 압연이나 다이를 통한 인발(引拔)에 의해 최종규격품이 된다. 일부 목적을 위해, 관(管)은 인발(引拔 : drwaing)을 거치지 않고 그들의 최종규격품으로 압출될 수도 있다.

구리로 만든 관(管)은 많은 공업용도(예: 조리용 · 가열용 · 증류용 · 정제용이나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한다)를 가지며, 또 건축물에 있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공급용에 사용한다. 구리합금의 콘덴서 튜브(condenser tube)는 내부식성(특히 해수)이 강하므로 선박과 발전소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중공(中空)프로파일[압출에 의하여 얻어진 핀(fin)이나 길(gill)이 부착된 관(管 : tube)을 포함한다](제7407호)
- (b) 관(管 : tube)연결구류(제7412호)
- (c) 용접에 의하여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부착된 관(管)(보통 제7419호)
- (d)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제8307호)
- (e) 관(管)은 다른 류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제품으로 만든 것(예: 기계부분품)(제16부)

74.12 -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7412.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2.2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관(管)의 접속용이나 조립용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제7415호**)

(b) 탭(tap) · 콕(cock) · 밸브(valve) 등이 있는 연결구류(**제8481호**)

74.13 -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역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제7312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

구리는 전기전도도가 우량하므로, 보통 전선과 케이블(cable) 제조에 사용하며 ; 구리의 함유 중량이 우위인 경우는, 강(鋼)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심(core)을 박은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해당된다(제15부의 주 제7호).

그러나, 전기절연한 전선과 케이블은 **제외한다(제8544호)**.

[74.14]

74.15 -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7415.29 -- 기타

-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7415.39 -- 기타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축에 구리로 만든 머리부분(頭部)을 부착한 것**(주로 실내장식품이나 장식용 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7317호와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구두용 프로텍터(shoe protector)(부착용 포인트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7419호)**.



[소호해설]

소호 제7415.33호

“스크루(screw)”에는 스크루훅(screw hook)과 스크루링(screw ring)을 **포함하지 않으며** ; 이들은 소호 **제7415.39호**에 분류한다.

[74.16]

[74.17]

74.18 -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418.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이 호에는 제7321호·제7323호와 제7324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가정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구리로 만든 조리용과 가열 기구를 포함하며, 예로는 여행용·캠핑용 등과 가정용에 사용하는 소형의 가열기구[석유·파라핀(paraffin)·알코올을 사용하는 스토브(stove)]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제7322호의 해설서에서 설명한 가정용의 기구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공구의 특성을 가진 가정용품(**제82류**)(제7323호의 해설서 참조)
- (b) 블로램프(blow lamp)(**제8205호**)
- (c) 칼붙이과 스푼·포크·국자 등(**제8211호부터 제8215호까지**)
- (d) 장식용품(**제8306호**)
- (e) **제8419호**의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 등의 기계나 유사한 실험실용 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비전기식의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는 상관없다)
 - (2)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운터(counter)형 커피 추출기와 그 밖의 특수 가열기·조리기 등
- (f) 제85류에 해당되는 가정용 기기(특히 **제8509호**나 **제8516호**에 속하는 장치와 기구)
- (g) **제94류**에 해당되는 제품
- (h) 수동식 체(hand sieve)(**제9604호**)
- (ij) 담배용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제9613호**)
- (k)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분무기(**제9616호**)

74.19 -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20 -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80 - 기타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 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포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따로 분류하지 않은 구리로 만든 안전핀(safety pin)과 그 밖의 핀(pin)[모자핀(hatpin)과 그 밖의 장식용 핀(ornamental pin)·제도용 핀(drawing pin)은 **제외한다**]
- (2) 구리로 만든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재료의 종류나 용적의 크기에 상관없고, 내장이나 열절연을 한 것인지에도 상관없으며, 기계장치나 가열이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는 것)(제7309호와 제7310호의 해설 참조)
- (3) 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의 용기(제7311호의 해설 참조)
- (4) 구리로 만든 체인(chain)과 그 부분품(제7315호의 해설 참조)[모조 신변장식용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체인(chain)(예: 시계용 체인과 장신구용 체인)은 **제외한다**](**제7117호**)
-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열거한 형태의 구리로 만든 제품
- (6) 구리나 구리합금(예: 황동)으로 만든 전기도금용 양극(제7508호의 해설서(A)부분 참조)
- (7) 용접에 의하여 핀(fin)나 길(gill)이 부착되어 있는 관(管)(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구리 선(copper wire)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과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9) 스프링(spring)[**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spring)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분류하지 않는다**.

- (a) 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금속실을 사용한 직물(**제5809호**)
- (b) 선망(線網 : wire mesh)으로 된 납접판(prepared metal brazing plate)(**제8311호**)
- (c) 수동식 체(hand sieve)나 어레미로 완성된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제9604호**)



[소호해설]

소호 제7419.91호

소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에 해설은 이 소호의 제품에도 준용한다. 주조나 성형한 제품의 경우, 스프루(sprue)와 피더헤드(feeder head)를 제거할 수도 있다.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이고
-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 이하이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소	합량 중량 비율(%)
철	0.5
산소	0.4
그 밖의 원소, 각각	0.3

나. 니켈 합금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 2)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 3) 니켈과 코발트 외에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7508.10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

총설

이 류에는 니켈(nickel)과 그 합금과 이들의 특정한 제품을 분류한다.

니켈은 비교적 단단한 회백색 금속으로, 섭씨 1,453℃에 녹는다. 이것은 강자성(強磁性), 가단성(可鍛性)·연성(延性)·견고성(堅固性)이 있으며 내식성(耐蝕性)과 내산화성(耐酸化性)이 있다.

*
* *

이는 주로 여러 합금(특히 합금강)의 제조, 보통 전착법(電着法 : electrodeposition)에 의한 다른 금속의 피복용과 화학반응 촉매로 사용한다. 합금되지 않은 니켈은 화학공업설비의 제조에 광범하게 사용하고, 니켈과 그 합금은 화폐 제조에도 사용한다.

*
* *

제15부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주로 해당되는 니켈 합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니켈-철합금** : 높은 자석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과 낮은 자기이력현상(hysteresis)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저전선·유도코일철심·자기차단용 등의 재료로 쓰인다.
- (2) **니켈-크로뮴 합금이나 니켈-크로뮴-철 합금** : 이들에는 여러 가지 부식성 환경은 물론 고온에서 산화와 스케일(scaling) 발생에 대해 뛰어난 저항성과 좋은 강도를 특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상업용 재료를 포함한다. 이들 재료는 전기저항 가열장치 내의 가열기 소자로 사용하며, 철강과 그 밖의 금속의 열처리에 사용하는 머플(muffle)과 레토르트(retort)와 같은 구성 요소로 사용하거나 고온의 화학이나 석유화학공업용의 파이프와 튜빙(tubing)으로도 사용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보통 고온에서 항공기 터빈에 고강도를 주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슈퍼합금(super alloy)”이라고 알려진 특수 합금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곳은 터빈 날개·연소실의 라이너(liner)·트랜지션 단면(transition section) 등이다. 흔히 이들 합금은 니켈베이스(nickel-base) 구조의 강도를 현저하게 개선시키는데 유효한 몰리브덴·텅스텐·니오븀·알루미늄·티타늄 등을 함유하고 있다.
- (3) **니켈-구리합금** : 내식성(耐蝕性)뿐만 아니라 우수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 합금은 프로펠러(propeller)축과 파스너(fastener)같은 것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특정한 무기산(mineral acid)이나 유기산(organic acid)이나 알칼리(alkali)와 염(salt)에 노출되는 펌프·밸브(valve)·튜브와 그 밖의 형태의 장치에도 사용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니켈의 매트(matte)·소결(燒結)한 산화니켈(nickel oxide)과 그 밖의 니켈제련의 중간 생산물과 니켈의 괴(塊 : unwrought), 니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501호부터 제7503호까지)

- (B)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제7504호)
- (C) 제7502호의 니켈 덩어리를 보통 압연·단조(鍛造)·인발(引拔)이나 압출하여 얻어진 물품 (제7505호와 제7506호)
- (D)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fittings)(제7507호), 제7508호의 전기도금의 양극과 그 밖의 제품 (이것은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제15부의 주 제1호나 **제82류** 부터 **제83류**까지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니켈 제품을 포함한다)

*
* *

니켈 물품과 제품에는 금속적인 성질이나 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러한 처리는 보통 제72류 총설 끝부분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 전기도금용의 양극에 행해진 특별한 처리에 대하여는 제7508호의 해설 참조).

*
* *

복합물(composite articles)의 분류에 대해서는 제15부 총설에 설명되어 있다.

**75.01 - 니켈의 매트(mat)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 ·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
생산물**

7501.10 - 니켈의 매트(mat)

7501.2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1) 니켈(nickel)의 매트(matte)

매트(matte)는 니켈광을 처리(배소하거나 녹이는 등)하여 얻어지며, 사용한 금속광과 제법에 따라 니켈-철-황계 · 니켈-철-구리-황계 · 니켈-황계나 니켈-구리-황계의 조성을 갖고 있다.

매트는 보통 블록(block)이나 슬래브(slab)의 모양으로 주조한 것(포장이나 운송의 편의상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 · 알갱이 또는 가루(특히 특정 황화니켈 매트의 경우)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들 매트는 니켈 덩어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2) 니켈 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순수하지 않은 산화니켈(nickel oxide)**[예: 산화니켈의 소결물(燒結物) · 가루 상태의 산화니켈("green nickel oxide")]: 이것은 황화니켈광이나 산화니켈광을 처리하여 얻어진다. 이들 순수하지 않은 산화물은 주로 합금강 제조에 사용한다.

산화니켈의 소결물(燒結物)(nickel oxide sinter)은 보통 가루 상태나 50mm 이하의 덩어리 형태이다.

- (ii) **순수하지 않은 페로니켈(ferro-nickel)**: 이것은 황(0.5% 이상) · 인(phosphorus) · 그 밖의 불순물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정제하지 않으면 철강업에 있어 합금용 물질로서 사용할 수 없다. **정제된 페로니켈(refined ferro-nickel)**은 거의 전적으로 철강업에 있어서 특수강의 제조에 필요한 니켈(nickel)원으로서 사용하며; 따라서 정제된 페로니켈은 제72류의 주 제1호다목의 규정을 전제로 해서 **제7202호**의 합금철(ferro-alloy)로 분류한다.

- (iii) **니켈 스파이스[nickel speiss(砒鉞)]**: 이는 비산화물의 혼합물로서 덩어리 모양인데; 현재로는 상업적으로 별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75.02 - 니켈의 괴(塊)

7502.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7502.20 - 니켈 합금

니켈의 괴(塊)(unwrought nickel) : 보통 잉곳(ingot) · 피그(pig) · 펠릿(pellet) · 큐브(cube) · 론델(rondelle)(원통형) · 브리켓(briquette) · 샷(shot) · 음극(cathode)이나 그 밖의 전착(electrodeposited) 모양이다. 이러한 일차 모양의 것은 주로 합금강, 비철금속의 합금이나 어떤 화학품을 제조할 때 첨가제로 쓰인다. 이러한 모양의 것 중 일부는 티타늄(titanium)으로 만든 바스켓(basket)에 넣어 니켈 도금용이나 니켈 가루의 제조용으로 쓰인다.

정제되지 않은 니켈(unrefined nickel)은 보통 전기분해(electrolysi)에 의해 정련용 양극으로 구조된다. 이 호의 양극(anode)은 일반적으로 전해정제용 탱크에 그들을 매달기 위한 두 개의 돌출부를 갖는 슬래브(slab)의 형태이다. 이들 물품은 **제7508호**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기도금용 양극과 혼동되서는 안 된다.

음극(cathode)은 전해정제탱크에다 그들을 매달기 위해 두 개의 니켈루프(nickel loop)가 부착되어 있는 정제한 니켈 “모판들(starting sheet)”위로 전해 침전된 것에 의해 얻는 판이다. 정제된 니켈(nickel)의 침전물이 쌓임에 따라, 모판은 음극(cathode)에 통합되어 불가분의 것이 된다.

트리밍하지 않은 음극(untrimmed cathode)은 보통 루프(loop)를 제거하지 않고 거래되며, 이것은 흔히 접합부위에 침전된 니켈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 도금용의 양극에 고착되어 매달려져 있는 훅(suspension hook)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트리밍하지 않은 캐소드는 시트(sheet) 모양의 전기도금용 양극(폭이 30.5cm 초과하는 것은 거의 없다)보다도 큰 것(약 96×71×1.25cm)이다.

스트립(strip)이나 직사각형의 조각으로 단순히 트리밍(trimming)된 것이거나 절단된 캐소드는 그들의 크기나 그 용도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은 매달기 위한 훅(hook)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훅을 부착하도록 준비[예: 천공(穿孔)이나 태핑(tapping)]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제7508호의 전기도금용의 양극과 구별된다.

이 호에서는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는 **제외한다(제7504호)**.

75.03 -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관한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니켈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회(灰)와 잔재물(**제2620호**)
- (b) 재용융(再熔融 : remelted)한 니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으로 주조한 잉곳(ingot)과 이와 유사한 괴 모양의 것(**제7502호**)

75.04 -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니켈의 가루(powder)와 플레이크(flake)**(그 의도된 용도가 무엇인지에는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니켈 가루는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가루와 플레이크는 그 물리적 특성에 의해 합금하지 않은 상태로 니켈 카드뮴 축전지(nickel-cadmium battery)의 플레이트(plate)용, 황산니켈(nickel), · 염화니켈(nickel) · 그 밖의 니켈염(nickel salts)의 제조용, 금속탄화물(metal carbide)의 결합제용, 니켈(nickel)합금(예: 합금강)의 제조용이나 촉매로서 쓰인다.

이들은 또한 순수한 상태나 합금 상태로나 다른 금속가루(예: 철가루)와 혼합되어 사용하는데, 이는 자석과 같은 공업제품이 되도록 압축과 소결(燒結)하기 위한 것과 시트(sheet) · 스트립(strip)과 박(箔)으로 직접 압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산화 니켈의 소결물(nickel oxide sinter)을 **제외한다(제7501호)**.

75.05 - 니켈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7505.1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 선(線)

7505.2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7505.2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이들 제품은 제15부 주 제9호가목 · 나목과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도금용 니켈(nickel) 양극(anode)에 관한 특수규정(제7508호 해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구리제품에 상응한다. 이 예외조항을 **전제로 하여** 제7407호와 제7408호에 관한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b) 구조물용으로 가공된 봉이나 프로파일(profile)(**제7508호**)

(c) 절연 전기봉(insulation electric bar)[보통 “버스바(busbar)”와 전선(에나멜 도장한 전선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져 있다](**제8544호**)

75.06 -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506.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7506.2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서 규정한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과 박(箔 : foil)**을 분류하는데, 이들 물품은 제7409호와 제7410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구리제품과 상응한다.

판(plate)과 시트(sheet)는 용접·압연 등에 의한 철강을 입히는데 사용하며, 특히 화학공업용 장치의 건설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을 **제외한다(제7508호)**.

75.07 -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 관(管)

7507.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7507.1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7507.20 - 관(管) 연결구류

제15부 주 제9호마목에 **관(管 : tube · pipe)**을 규정하고 있다.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니켈(nickel)이나 니켈 합금의 관(管)이나 그 연결구류(fittings)는 니켈의 내식성(耐蝕性)[산(酸) · 증기 등에 대한 내식성]때문에 화학공업 · 식품공업 · 제지공업 등의 기기 · 복수기(復水器 : steam condenser) · 피하주사침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제7505호**)

(b) 관(管) 등을 조립하거나 부착하는데 사용하는 니켈볼트(nickel bolt)와 니켈너트(nickel nut)(**제7508호**)

(c) 탭(tap) · 콕(cock) · 밸브(valve) 등이 부착된 연결구류(**제8481호**)

(d) 특정한 제품으로 제조한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 예: 기계부분품(**제16부**)

75.08 -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

7508.1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7508.90 - 기타

(A) 전기도금의 니켈 양극(전기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전해침전(electrolytic deposition)에 의한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의 정제한 니켈 양극(anode)을 분류한다. 이는 주조 · 압연 · 인발(引拔 : drawing) · 압출하거나 제7502호의 음극(cathode)이나 전착 모양의 것으로부터 제조한다. 이 양극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모양이 있다.

- (1) 도금되는 물품에 적합하게 최대한의 양극면(anode surface)을 부여하기 위한 특수한 모양 [별 · 고리형 · 특정의 프로파일(profile)]의 것과, 양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당한 길이로 된 봉 모양[보통 횡단면이 타원 모양(oval elliptical) · 장능형(長菱形) · 다이아몬드 모양의 단면이다]의 것
- (2) 플레이트(plate)(평판 모양이나 곡면 모양의 것) · 스트립(strip) · 시트(sheet) · 디스크(disc)(평판 모양이나 물결 모양의 것) · 반구(半球) 모양 · 볼(ball) 모양의 것 :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품은 전기도금용의 양극과 같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전해도금탱크에다 그들을 훅(hook)을 가지고 매달 수 있거나, 훅용으로 사용하도록 준비된 것 [예: 드레딩(threading) · 천공(穿孔)이나 태핑(tapping)]이어야 한다.

이 양극(anode)은 보통 순도가 높은 것이다. 그렇지만 제련 공정후 어떤 원소의 소량이 잔류하는 수도 있으며 인위적으로 첨가되기도 한다.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이유는 전표면에 걸쳐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양극을 소극(depolarise)하기 위한 것인데, 소극을 하면 전표면에 걸쳐 골고루 도금이 이루어지고 슬러지(sludge)의 형성을 통한 니켈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전해용 양극의 특징은 제7502호 해설 두 번째 단락에 기술되어 있는 전기제련용 주조 양극(이 호에서 **제외한다**)과 구분하게 해 준다.

그러나 니켈도금용으로 흔히 쓰이는 이들 양극은 빈번하게 바스켓(basket) 양극에 의해, 즉, 티타늄바스켓(titanium basket)에서의 니켈 론델스(nickel rondelles)와 같은 괴 모양의 것(제7502호 해설서 참조)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호에는 니켈도금에 사용하기로 되었거나 전해도금용 양극으로 전환에 사용하기로 되었거나에 상관없이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단순히 전해(electrolysis)에 의해 얻어지거나[트림(trimmed)되었는지는 상관없다] 스트립(strip)이나 작은 직사각형 조각으로 절단된 판(plate)[음극(cathode)](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제7502호**)
- (b) 괴 상태의 펠릿(pellet)(**제7502호**)
- (c) 단순한 주조 · 압연이나 압출에 의해 얻어진 봉(bar)(위에 기재된 모양 · 길이나 가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제7502호**나 **제7505호**)
- (d) 판(plate)(단순히 압연한 것)(**제7506호**)

(B) 기 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그룹이나 앞의 호까지에 열거한 물품,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니켈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창틀과 같은 구조물과 구조물용으로 가공된 부분품
 - (2) 저장탱크·통과 그 밖의 용기로서 용량은 관계없지만 기계장치나 온도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
 - (3) 니켈선(nickel wire)으로 만든 클로스(cloth)·석쇠·그물과 니켈로 만든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4) 니켈로 만든 못·압정·너트(nut)·볼트(bolt)·스크루(screw)와 제7317호와 제7318호 해설에 규정한 있는 형태의 그 밖의 제품
 - (5) 스프링(**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 (6) 가정용품과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7) 화폐주조용의 블랭크(blank)[가장자리를 용기한 니켈 디스크(nickel disc) 모양의 것]
 - (8) 제7325호와 제7326호 해설에 열거한 철강제품에 상당하는 니켈 제품
-

제 7 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소	함유 중량 비율(%)
철 + 규소 그 밖의 원소 ⁽¹⁾ , 각각	1 0.1 ⁽²⁾
<p>(1) 그 밖의 원소 : 예를 들면 크로뮴·구리·마그네슘·망간·니켈·아연 (2) 구리는 100분의 0.1 초과 100분의 0.2 이하의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크로뮴의 함유량과 망간의 함유량은 각각 100분의 0.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나.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

총설

이 류는 알루미늄(aluminium)과 그 합금과 이들의 특정한 제품을 분류한다.

알루미늄은 주로 보크사이트(bauxite), 즉, 가공되지 않은 수산화 알루미늄(제2606호 해설 참조)에서 얻어진다. 제조의 제일단계는 보크사이트(bauxite)를 순수한 산화알루미늄(aluminium oxide)[알루미나(alumina)]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잘게 부순 광석을 하소(煨燒)시킨 다음에 가성소다로 처리하면 알루미늄산소다의 용액이 되며 ; 불용액성의 불순물(산화철, 실리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여과한다. 그때 침전되는 것이 수산화 알루미늄(aluminium hydroxide)인데 이것을 하소(煨燒)하여 백색 가루 상태인 순수한 산화알루미늄(aluminium oxide)을 얻는다. 그러나 수산화알루미늄과 산화알루미늄은 **제28류**에 분류한다.

제조 두 번째 단계는 용융(溶融 : fused)된 방정석(cryolite)에 알루미나(alumina)를 용해시켜 전해환원하여 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과정이다(방정석은 불화알루미늄소다이지만 단지 용제로서만 작용한다). 이 전해는 음극(cathode)으로 작용하는 전해통(탄소로 도장되어 있다)에서 행하여지는데 ; 양극(anode)으로는 탄소봉(carbon bar)을 사용한다. 알루미늄은 사이펀(syphon)된 곳에서 전해통의 저부에 모여지며 이것이 빨아 올려지게 된다. 이것은 보통 정제 후 블록(block)·잉곳(ingot)·빌릿(billet)·슬래브(slab)·와이어바(wire-bar) 등의 모양으로 주조된다. 전해를 되풀이하면 아주 고순도의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다.

알루미늄은 또한 백류석(leucite)(알루미늄과 칼륨의 규산복염)과 같은 어떤 다른 광석을 처리하거나 알루미늄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거나 잔재물[슬래그(slag)·드로스(dross) 등] 처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
* *

알루미늄은 가벼운 특징을 가진 청백색 금속이다. 연성(軟性)이 매우 크며 쉽게 압연, 인발(引拔), 단조(鍛造), 압착되고 주조 등도 용이하다. 다른 연성(軟性) 금속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도 압출이나 다이 주조용으로 매우 적합하다. 최근에는 용접도 가능하다. 알루미늄은 열이나 전기의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아주 좋은 반사경이다. 알루미늄 표면에 자연히 형성되는 산화피막(oxide film)은 해당 금속을 보호하며, 양극 처리나 화학 처리에 의해 상당한 두께의 인공막을 가꿈 만든다. 이와 같은 처리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표면이 착색되는 경우가 있다.

*
* *

구리·마그네슘·규소·아연·망간과 같은 다른 원소와 합금을 만들면 알루미늄의 경도(硬度)나 강인성이 매우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어떤 합금은 시효경화(時效硬化)처리에 의하여 개량되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담금질을 조작함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제15부의 주 제5호(총설 참조)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알루미늄 합금**은 다음과 같다.

- (1) 알루미늄-구리합금(구리를 적게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
- (2) 알루미늄-아연-구리합금
- (3) 알루미늄-규소합금[예: “알팍스(alpax)”, “실루민(silumin)”]

- (4) 알루미늄-망간-마그네슘합금
- (5) 알루미늄-마그네슘-규소합금[예: “알멜렉(almelec)”, “알드레이(aldrey)”]
- (6) 알루미늄-구리-마그네슘-망간합금[예: “두랄루민(duralumin)”]
- (7) 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예: “마그날륨(magnalium)”]
- (8) 알루미늄-망간합금
- (9) 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

이들 합금의 대부분은 소량의 철·니켈·크로뮴 등을 함유하고 있고 ; 또한 이들 합금은 흔히 원생산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
* *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예: 케이블 같은 것) ; 모든 종류의 용기(여러 가지 크기의 저장조와 통, 수송용 통, 드럼 등)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

*
* *

이 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알루미늄의 피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601호와 제7602호)
- (B)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flake)(제7603호)
- (C) 제7601호의 알루미늄 피를 일반적으로 압연, 압출, 인발(引拔)이나 단조(鍛造)하여 얻은 물품(제7604호부터 제7607호까지)
- (D) 제7608호에서 제7615호까지에 열거된 여러 제품과 모든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하는 잔여호(residual heading)인 제7616호에 해당되는 그 밖의 제품(단,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알루미늄과 알루미나(alumina)를 소결(燒結)하여 얻어진 물품은 서멧(cermet)으로 간주하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8113호).

*
* *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 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복합물(composite goods)의 분류, 특히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의 분류는 제15부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

76.01 -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7601.20 - 알루미늄 합금

이 호에는 전해(電解) 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체 상태·블록(block) 모양·잉곳(ingot)·빌릿(billet)·슬래브(slab)·노치봉(notched bar)·와이어 바(wire-bar)나 유사한 모양의 **알루미늄 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단조(鍛造 : forging)·인발(引拔 : drawing)·압출·해머링(hammering)하거나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야금(冶金)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펠릿(pellet)[특히 철강 제조할 때 탈산제(脫酸劑)로 쓰인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된 어떤 봉 모양의 것 등도 이 호에 분류한다(이 호에 준용하는 제7403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서는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를 **제외한다(제7603호)**.

76.02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7204호의 해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관한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알루미늄 공업의 원재료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이것은 야금(冶金) 공업에서 산소 제거제나 탄소 제거제로도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철강을 제조할 때 슬래그(slag)·드로스(dross) 등으로서 회수 가능한 알루미늄 규산염의 형태로 함유하고 있는 것(제2618호나 제2619호)
- (b) 알루미늄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회(灰)와 잔재물(제2620호)
- (c)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용해한 것에서 주조한 잉곳(ingot)과 이와 유사한 알루미늄 괴(제7601호)

76.03 -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7603.20 -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이 호에는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한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flake)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구리의 가루에 상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7406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는 발광탄의 열 발생원[예: 테르밋(thermit) 공정에서]으로 사용하거나 부식으로부터 다른 금속을 보호하기 위하여[예: 캘러라이징(calorising)·금속접합]·로켓(rocket) 추진체와 특수 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착색제·페인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조제된 가루나 플레이크[예: 다른 착색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것, 결합제(binder)나 용제(solvent)를 이용해서 현탁액(suspension)·분산물(dispersion)이나 페이스트(paste) 상태로 조제된 것](제32류)
- (b) 알루미늄 펠릿(pellet)(제7601호)
- (c) 알루미늄박(箔)을 절단한 스팅글(spangle)(제8308호)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604.29 -- 기타

제15부 주 제9호가목과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이들 물품은 구리로 만든 해당 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7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구조물용으로 가공된 봉과 프로파일(profile)(**제7610호**)

(b) 도포된 용접봉(**제8311호**)

76.05 - 알루미늄의 선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605.19 -- 기타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5.2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605.29 -- 기타

선(線 : wire)은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 정의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금속드리사(**제5605호**)

(b) 알루미늄선(aluminium wire)으로 보강한 끈(twine)이나 배의 밧줄(cordage)(**제5607호**)

(c) **제7614호**에 해당하는 연선(stranded wire)·케이블과 그 밖의 물품

(d) 도포된 용접봉(**제8311호**)

(e) 절연 전선과 케이블[에나멜을 피복한(enamelled) 선이나 양극처리를 한 선을 포함한다](**제8544호**)

(f) 악기용의 현(**제9209호**)

76.06 -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6.1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기타

7606.9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6.9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한 이들 물품은 구리로 만든 해당 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9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않은 박(箔)(**제7607호**)

(b)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616호**)

76.07 -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607.19 -- 기타

7607.20 - 뒷면을 붙인 것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mm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 제7410호의 구리 박(箔)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알루미늄박(箔)은 병마개와 캡슐을 제조할 때, 식료품·시가·궐련(cigarette)·담배 등을 포장할 때 사용한다. 또한 제7603호의 가루 제조용·열절연용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제조용·모조 은으로서의 피복용·수의외과에 있어 상처의 봉대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스탬프용 박(箔)(stamping foil)[블로킹 박(箔 : blocking foil)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박(箔 : foil)은 젤라틴(gelatin)·아교나 그 박의 접착제로 집적시킨 알루미늄 가루로 되어 있거나 종이·플라스틱이나 그 박의 지지물 위에 알루미늄을 붙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책표지·모자용 테 등의 인쇄용으로 사용한다 (**제3212호**).
- (b) 알루미늄 박(箔)으로 안(주, 용기의 안쪽이 될 면)을 낸, 밀크·과일주스나 그 밖의 식료품의 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종이나 판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제4811호)**
- (c) 인쇄를 통해 개별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쇄한 알루미늄 박(箔)의 레이블(label)(**제4911호**)
- (d) 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의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제7606호**)
- (e)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형태의 박(箔 : foil)(**제9505호**)



[소호해설]

소호 제7607.11호

냉간(冷間) 압연이나 열간(熱間) 압연 이외에 이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

- (1) 응력경감(stress-relieving)이나 서냉(annealing)과 같은 열처리, 또한 이러한 처리들은 압연밀(rolling mill) 기계에서 묻은 윤활유 찌꺼기를 제거해준다.
- (2) 트리밍(trimming)·슬리팅(slitting)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해 주는 가공. 예를 들면, 넓은 스트립(strip)을 보다 좁은 스트립으로 분할해 주는 가공
- (3) 여러 층으로 얇게 적층된 시트(sheet)를 개별 분할(풀어주는 것)해 주는 가공. 이러한 작업은 두 겹 이상의 박(箔) 코일이 최후 압연 밀기계(rolling mill)을 통과할 때 동시에 감겨진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 (4) 화학적 세정이나 세척. 이러한 것은 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오일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실시된다.

76.08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8.2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 : tube · pipe)은 다음과 같은 공정에 의해 제조한다.

- (a) 중공(中空) 주조물이나 구멍이 난 둥근 잉곳(ingot)을 압출하여 ;
- (b) 다이(die)나 롤(roll) 모양의 평판-압연한 반제품[스트립(strip)이나 시트(sheet)]을 세로나 나선 모양 이음새가 되도록 용접하여 ;
- (c) 충격압출(impact extrusion)에 의해서 ;
- (d) 주조에 의해서,

압출이나 용접한 관(管)은 얇은 두께, 치수가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나은 완제품의 관(管 : tube · pipe)을 얻기 위해 냉간 인발(冷間引拔)할 수도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 · 전선용 도관 · 가구 · 열교환기 · 구조물의 제조용

이 호에는 소켓(socket) · 플랜지(flange) · 칼라(collar) · 링(ring) 등을 부착한 관(管)(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제7604호**)
- (b) 관(管)의 연결구류(**제7609호**)
- (c)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제8307호**)
- (d)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으로 가공한 것과 같이 특정 제품용으로 제조한 관(管)

76.09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이 호에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구조물 부분품의 조립용으로 특별히 만든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기구(**제7610호**)
- (b) 관(管 : tubing)을 지지하기 위한 행거(hanger) 및 브래킷(bracket) ; 관(管 : tube · pipe)의 조립이나 고정용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볼트(bolt)와 너트(nut)(**제7616호**)
- (c) 탭(tap) · 콕(cock) · 밸브(valve) 등을 가진 연결구류(**제8481호**)

76.1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7610.90 - 기타

이 호에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구조물의 부분품은 리벳(rivet)이나 볼트(bolt) 등으로 죄는 보통의 방법 대신에 합성수지나 고무 화합물로 결속시키는 때가 있다.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輕量性) 때문에 철강 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조립식 건축물·선박의 상부 구조물·다리·미단이·전기격자나 라디오용 탑·망원용 탑·문이나 창틀 레일 등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84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조립품
- (b) **제89류**의 수상 구조물
- (c)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76.11 -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제7309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알루미늄은 경량성(輕量性)과 내식성(耐蝕性) 때문에 철강 대신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화학공업·양조업·낙농업·치즈업 등에 사용하는 저장조·통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는 **제외한다(제8609호)**.

76.12 -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7612.90 - 기타

제7310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통(cask)과 드럼(drum)은 주로 밀크·맥주·와인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며 ; 알루미늄 캔(can)과 상자(box)는 식료품 포장에 흔히 사용한다. 이 호에는 역시 단단한 튜브형의 용기[예: 알약이나 정제(tablet)와 같은 의약품용]와 페인트용 튜브와 크림용 용기·치약용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4202호의 물품
- (b) 비스킷(biscuit)용 통·차통(tea caddy)·설탕통(sugar tin)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부엌용의 용기와 통(제7615호)
- (c) 담배케이스(cigarette case)·분통(powder box)·공구용 상자와 유사한 개인용이나 직업용에 사용하는 용기(제7616호)
- (d) 제8304호의 물품
- (e) 장식용 상자(제8306호)
- (f) 한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제8609호)
- (g)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76.13 -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제7311호 해설을 참조한다.

76.14 -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7614.90 - 기타

이 호에는 제73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경량성(輕量性)과 전도율(傳導率)이 높다는 점 때문에 알루미늄과 알루미늄-마그네슘-규소 합금[예: "알멜렉(almelec)" 와 "알드레이(aldrey)"]은 종종 전선과 케이블 제조에 있어 구리 대신으로 사용한다.

알루미늄 케이블(aluminium cable)은 강(鋼)이나 그 밖의 금속의 심(core)을 사용한 것이 있지만 알루미늄의 함유 중량이 많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제15부의 주 제7호 참조).

전기절연한 전선과 케이블은 **제외한다(제8544호)**.

76.15 -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615.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이 호에는 제7323호와 제7324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제품(특히 주방용품·위생용과 화장용의 것)을 분류한다. 또한 제7418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유사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조리나 가열기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7612호**의 캔·상자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기
- (b) 공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정용품(**제82류**)(제7323호 해설 참조)
- (c) **제8211호부터 제8215호까지**에 해당되는 칼붙이·스푼·국자·포크와 그 밖의 물품
- (d) 장식용품(**제8306호**)
- (e) **제8419호**에 해당되는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그 밖의 기기
- (f) **제85류**에 해당되는 가정용 전기기기(특히 **제8509호**와 **제8516호**에 속하는 기기와 장치)
- (g) **제94류**의 물품
- (h) 담배ライター와 그 밖의ライター(**제9613호**)
- (ij) **제9617호**에 해당되는 진공 플라스크(vacuum flask)와 그 밖의 진공용기

76.16 -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 기타

7616.91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7616.99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제7317호와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한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 (2) 제7319호의 해설에 규정한 수편침·돛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안전핀·그 밖의 핀과 그 밖의 제품
- (3) 알루미늄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 (4) 알루미늄선(aluminium wire)의 클로스(cloth)·그릴(grill)과 망(netting)과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314호 해설 참조) : 익스팬디드 메탈은 점포 진열장·확성기용 그릴·휘발성 액체나 가스 등의 운반과 저장 할 때 사용하는 폭발 억제제로 사용한다.
-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의류·실내장식품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금속실을 사용한 직물(**제5809호**)
- (b) 기계 부분품의 형태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예를 들면,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 것) (**제84류나 제85류**)
- (c) 와이어클로스(wire cloth)로 만든 수동식 체(hand sieve)(**제9604호**)

제 7 7 류

〈유 보〉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정제한 납”이란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원소 표

원소	한계함유 중량 비율(%)
은 (Ag)	0.02
비소 (As)	0.005
비스무트 (Bi)	0.05
칼슘 (Ca)	0.002
카드뮴 (Cd)	0.002
구리 (Cu)	0.08
철 (Fe)	0.002
황 (S)	0.002
안티모니 (Sb)	0.005
주석 (Sn)	0.005
아연 (Zn)	0.002
기타(예: 텔루륨), 각각	0.001

총설

이 류에는 납과 그 합금과 그들의 특정 제품을 분류한다.

납은 흔히 은(silver)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황화납인 방연광(galena)으로부터 주로 제조된다. 광석을 잘게 부수어 부유선광(浮遊選鑛)을 한 후, 일반적으로 배소(焙燒)나 소결(燒結)하고, 그 다음 용해하여 환원제련된다. 소결(燒結)과정에서, 황화물은 대부분 산화물로 되며, 용해제련 과정에서 이 산화물은 코크스나 용제를 사용하여 납으로 환원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연(粗鉛: "bullion lead" or "work lead")이 제조되는데; 이는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며, 흔히 은을 함유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거의 완전한 순수 상태의 납을 제조하기 위하여 대개 더 정제된다.

납은 또한 납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제조되어지기도 한다.

*
* *

납은 무거운 청회색의 금속으로서; 매우 연성(延性)이 좋고, 쉽게 용해되며 매우 연하다(손톱으로도 쉽게 그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대개의 산(예: 황산이나 염산)에 대하여 내산성(耐酸性)이 있으므로 화학공장의 건설에 사용한다.

*
* *

납은 녹는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쉽게 합금을 만들 수 있다. 제15부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주요 납합금**은 다음과 같다(제15부 총설 참조).

- (1) 납-주석합금: 예를 들면,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한 합금물로서, 텀플레이트(terne-plate)와 차(茶)포장용 박(箔)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 (2) 납-안티모니-주석합금: 활자 제조용과 감마(減磨: anti-friction) 베어링에 사용한다.
- (3) 납-비소합금: 납탄의 제조에 사용한다.
- (4) 납-안티모니합금(hard lead): 실탄이나 축전지용 판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 (5) 납-칼슘합금, 납-안티모니-카드뮴, 납-텔루륨합금

*
*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납의 피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801호와 제7802호)
- (B) 제7801호의 납 피를 일반적으로 압연이나 압출하여 얻는 물품(제7804호와 제7806호); 납의 가루와 플레이크(제7804호)

제15부
제78류

(C) 관(管)·연결구류와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거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잔여호인 제7806호에 해당되는 그 밖의 모든
납 제품

*
* *

납의 물품과 제품은 그것의 금속적 성질이나 겉모습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처리가
행하여지며, 이 처리에 관한 것은 제72류 총설의 끝부분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물품의 분류
상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
* *

복합물(composite goods)의 분류에 대하여는 제15부의 총설 참조

78.01 - 납의 괴(塊)

7801.10 - 정제한 것

- 기타

7801.91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7801.99 -- 기타

이 호에는 불순한 조연(粗鉛 : lead bullion)이나 은을 함유한 납으로부터 전해에 의하여 정제된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순도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의 **납의 괴(塊)**를 분류한다. 이것은 블록(block)·잉곳(ingot)·피그(pig)·슬래브(slab)·케이크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거나, 주조된 봉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형태의 대부분은 압연, 압출, 합금제조용, 성형제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또한 전해정제용 주조 양극·압연이나 인발(引拔)용이나 성형제품의 재주조용으로 주조한 봉(rod)도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납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는 **제외한다(제7804호)**.

78.02 -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관한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납을 제련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회(灰 : ash)와 그 밖의 잔재물[예: 납 매트(matte)](**제2620호**)

(b)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주조한 잉곳(ingot)과 이와 유사한 괴(**제7801호**)

[78.03]

78.04 - 납의 판(sheet)·스트립(strip)·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판(sheet)·스트립(strip)·박(箔)

7804.11 -- 시트(sheet)·스트립(strip)·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804.19 -- 기타

7804.2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납의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박(箔:foil)에 관하여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하고 있다.

제7409호와 제7410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납의 판·시트·스트립의 주 용도는 지붕용 재료·저장용 탱크의 접합판물·통과 그 밖의 화학공장용·X-선 스크린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납의 박(箔 : lead foil)은 주로 포장용으로 쓰이는데[특히 차(tea)상자나 견(silk)용 상자의 안을 입히는 것], 어떤 경우에는 박(箔)에 주석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피복시킬 때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한 납의 가루와 플레이크를 분류한다. 제7406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착색제·페인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제된 납의 가루와 플레이크[예: 다른 착색제와 함께 조제한 것이나 접착제나 용제로 현탁액(suspension)·분산액(dispersion)이나 페이스트(paste)가 되도록 조제한 것]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제32류)**.

[78.05]

78.06 -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제82류**나 **제83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는** 모든 납의 제품을 분류하며(제15부의 주 제1호 참조), 이 제품이 주조·압착·스탬프(stamped) 등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착색제와 그 밖의 물품의 포장용으로 접을 수 있는 관(管 : tube) ; 통·저장용 탱크·드럼과 유사한 용기[산(酸)·방사선 물질이나 그 밖의 화학약품용의 것]로서 기계 장치나 가열 냉각장치를 갖고 있지 않는 것 ; 어망용 추·의류와 커튼 등의 납추 ; 시계 추와 범용성의 평형추 ; 납의 섬유나 납 연사로 만든 타래·헝크(hank)와 로프(ropе)[포장용이나 관(管) 연결용에 사용하는 것] ; 건축 구조물의 부분품 ; 요트의 선골(keel)과 잠수부의 흉판 ; 전기도금용 양극(제7508호 해설서 (A) 부분 참조) ; 제15부 주 제9호가목·제9호나목과 제9호다목에 정의된 납으로 만든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압연이나 인발(인발)이나 성형 제품의 재주조용으로 주조한 봉 (**제7801호**)과 도포한 봉(coated rod)(**제8311호**)을 **제외한다**]이 특히 적용된다.

이 호에는 제15부의 주 제9호마목에 규정한 납으로 만든 관(管)과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와 같은 관(管) 연결구류(fittings)를 포함한다[탭(tap)·콕(cock)·밸브(valve)] 등과 같은 연결구류(**제8481호**), 기계부분품과 같은 특수 제품용의 관(管)(**제16부**)과 납으로 피복한 전기절연 케이블(cable)(**제8544호**)은 **제외한다**. 이들 제품은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서에서 언급된 철강으로 만든 물품과 상응한다.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아연**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나. **아연합금**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 **아연 더스트(dust)**

아연증기를 응축시켜 얻어지는 더스트(dust)로서 아연 가루보다 더 미세한 구(球) 모양인 미립자로 구성된다. 63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 메시(mesh)를 가진 체를 통과한 미립자가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총설

이 류에는 아연과 아연합금과 그들의 특정 제품을 분류한다.

아연(zinc)은 주로 황화광(섬아연광 : zinc blende or sphalerite)에서 추출되지만 탄산염광과 규산염광[능아연광(菱亞鉛鑛 : smithsonite)·이극광(異極鑛 : hemimorphite)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제2608호의 해설 참조).

각 경우에 있어서, 광석을 처음에 농축하고, 다음 배소(焙燒)나 하소(煨燒)하면 황화광과 탄산염광의 경우에는 산화아연이 제조되고 규소광의 경우에는 무수(無水) 규산아연이 제조된다. 이를 열환원(thermal reduction)이나 전해(electrolysis)(규산염광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아연으로 제련한다.

(I) **열환원법(thermal reduction)** : 산화아연이나 규산아연을 코크스(coke)와 함께 밀폐된 증류기 내에 넣어 가열한다. 이때 아연이 증발하도록 충분히 온도를 높여주면 아연 증기는 증류되어 있는 응축기로 모여서 대부분이 “스펠터(spelter)”로 집적된다. 이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아연은 도금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여러 방법에 의해 정제되어지기도 한다.

불순물을 함유한 어떤 아연은 증류기 익스텐션(retort extensions)내에 아연 더스트(zinc dust)나 청색가루(blue powder)로 알려진 고운가루 상태로 침전된다.

최근의 제법은 수직형 증류기(vertical retort)에서 연속적으로 산화아연을 환원하여 아연을 증류하는 방법에 의해 제련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법에 의해서 다이주조용 합금제조에 적합한 순수한 아연이 얻어진다.

- (II) **전해법(electrolysis)** : 산화아연을 물계 한 황산에 용해시킨다. 이 용해된 황산아연을 조심스럽게 정제하면 카드뮴(cadmium)·철·구리 등이 제거되고 다음에 전기분해하여 매우 순수한 아연을 얻는다.

아연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아연을 제조할 수도 있다.

*
* *

아연은 청백색의 금속으로 적당한 온도 하에서 압연·인발(引拔)·스탬핑·압출 등이 가능하며 쉽게 주조될 수도 있다. 아연은 공기 중에서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용으로 사용하고(예: 지붕 덮는 것) 다른 금속, 특히, 철강의 보호막 형성[예: 용융도금, 전기침전, 아연피복(sherardising), 도장이나 분무 등에 의해]에 사용한다.

*
* *

아연은 합금 제조에도 사용하며 ; 이들 합금 중 다수(예: 황동)가 다른 금속의 중량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15부의 주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이 류에 해당되는 **주요 아연합금**들이다.

- (1) 아연-알루미늄합금[보통 구리나 마그네슘을 함유한다] : 다이(die) 주조용 특히 자동차 부분품용(기화기통·방열기용 그릴·계기판 등), 자전거 부분품(페달·발전기 상자 등)·라디오 부분품·냉장고 부분품 등에 사용한다. 이 합금 중 어떤 것은 보통의 아연보다도 강도가 높은 것의 제조, 프레스 공구의 제조와 철강으로 만든 파이프라인(pipeline), 콘덴서(condenser) 등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음극보호 양극(sacrificial anode)으로 사용한다.
- (2) 아연-구리합금(button 금속 합금) : 주조·스탬핑(stamping) 등에 사용한다. 아연과 아연합금의 구분에 대해서는 소호주 제1호가목과 제1호나목 참조

*
*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스펠터(spelter)와 그 밖의 아연 피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901호와 제7902호)
- (B) 아연의 더스트(dust), 가루와 플레이크(flake)(제7903호)
- (C) 일반적으로 제7901호의 아연 피를 압연, 인발(引拔)이나 압출하여 얻은 물품(제7904호와 제7905호)

제15부
제79류

(D) 관(管)과 관(管)의 연결구류(fittings)와 그 밖의 제7907호의 잔여 제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것 **이외의** 모든 아연 제품)

*
* *

아연의 물품과 제품은 금속의 성질이나 겉모습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처리에 관하여는 제72류 총설의 끝에 대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품 분류 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의 분류에 대해서는 제15부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다.

79.01 - 아연의 괴(塊)

-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7901.12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의 것

7901.20 - 아연 합금

이 호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스펠터(spelter)(위의 총설 참조)부터 정제한 아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순도를 가진 **아연의 괴**를 분류하는데, 이것에는 블록(block)·플레이트(plate)·잉곳(ingot)·빌릿(billet)·슬래브(slab)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통 도금용[용융(溶融) 도금이나 전기 침전법에 의한다]·합금 제조용·압연용·인발(引拔)용·압출용·성형제품 주조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와 플레이크(flake)는 **제외한다(제7903호)**.

79.02 -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7204호의 해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관한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아연 제조나 도금 공정 등으로부터 생긴 슬래그(slag)·회(灰)와 그 밖의 잔재물[예: 전기도금할 때 침전된 슬러지(sludge)와 담그는 통에서 생긴 금속 잔재물](**제2620호**)
- (b)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주조한 잉곳(ingot)과 이와 유사한 괴(**제7901호**)

79.03 - 아연의 더스트(dust) · 가루 · 플레이크(flake)

7903.10 - 아연 더스트(dust)

7903.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아연의 더스트(dust)**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아연의 더스트(dust)를 아연광의 환원작용에서 직접 생산된 아연 증기의 응축이나 아연함유 재료의 정련처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들 물품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아연연진(zinc flue dust)”, “산화아연연진(zinc oxide flue dust)”이나 “아연백하우스연진(zinc baghouse flue dust)”의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 연진(flue dust)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2)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아연의 가루(powder)와 아연의 플레이크(flake)**, 제7406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
* *

아연의 더스트(dust) · 가루(powder) · 플레이크(flake)는 금속 침투법(metallic cementation : sherardisation)에 의한 다른 금속의 도장 · 페인트 제조 · 화학용 환원제 등에 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착색제 · 페인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되도록 조제된 아연의 더스트 · 가루 · 플레이크[예: 다른 착색제와 함께 조제된 것이나 결합제나 용제로 처리하여 현탁액(suspension) · 분산액(dispersion)이나 페이스트(paste)가 되도록 조제된 것](**제32류**)
- (b) 아연 펠릿(pellet)(**제7901호**)

79.04 - 아연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이 호의 제품들에 관하여는 제15부 주 제9호가목 · 제9호나목 · 제9호다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구리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에 상응한다. 따라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407호와 제74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아연의 봉(rod)과 프로파일(profile)은 건축 재료로 자주 사용하고(제7907호) ; 아연의 선(線)은 주로 산소-아세틸렌 피스톨(oxy-acetylene pistol)로부터 금속을 분무할 때에 아연원(源)으로서 이용된다.

아연을 기본 재료로 하는 땀질(brazing)용이나 용접(welding)용 봉(일반적으로 압출에 의해 제조된다)은 용제 물질로 도포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일정한 길이로 절단했는지에 상관없다), 도포된 봉(rod)은 **제외한다(제8311호)**.

이 호에서는 예를 들면, 압연이나 인발(引拔)용이나 성형제품의 재구조용으로 주조한 봉도 **제외한다(제7901호)**.

79.05 -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한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박(箔) : foil**을 분류하며 ; 이들 물품은 제7409호와 제7410호에 규정하고 있는 구리 제품에 상응한다.

아연판(zinc plate)과 아연시트(zinc sheet)는 지붕용 타일(tile) 제조·건전지용 용기·사진제판·석판·인쇄용 판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907호**)

(b) **제8442호**의 조제한 인쇄용 판(plate) 등

[79.06]

79.07 -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또는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 모든 아연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저장용 탱크·통·드럼과 유사한 용기 등(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가 설비된 것은 **제외한다**)
- (2) 의료용품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관(管) 모양의 용기
- (3) 아연선의 클로스(cloth)·그릴과 망과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4) 못·압정·너트(nut)·볼트(bolt)·나사와 제7317호와 제7318호 해설에 규정한 형태의 그 밖의 제품
- (5) 가정용품과 위생용품: 예를 들면, 양동이·물통·쓰레기통·목욕통·물뿌리개·관주기(douche)·빨래판·물병[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아연을 도금한 철강으로 만든 것이 많은데 이때에는 **제외한다 (제7323호와 제7324호)**]
- (6) 아연으로 만든 “레이블(label)”표지(수목·식물 등에 사용하는 것)로서 문자·숫자나 디자인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거나 후에 추가될 주요한 본질적인 표장에 대하여 특정의 부수적인 표장만을 구비한 것. 모든 본질적인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완성된 “레이블(label)”은 **제8310호**에 분류한다.
- (7) 등사용 판(stencil plate)
- (8)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한 철강의 제품에 상응하는 타일 행거(tile hanger)와 그 밖의 여러 가지의 아연제품
- (9) 전기도금용의 아연양극(제7508호 해설 (A)부분 참조)
- (10) 부식으로부터 파이프라인(pipeline)·배의 탱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극보호양극(sacrificial anode)
- (11) 제7308호의 해설에 규정한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처마의 홈통·지붕캐핑(roof capping)·채광 창틀·빗물헤드·문이나 창틀·난간·레일링(railing)·온실이나 그 밖의 건축재료용의 골조
- (12) 제15부 주 제9호마목에 규정한 아연으로 만든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제7904호**의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제8481호**의 탭·코크(cock)·밸브(valve)가 부착된 연결구류, 특수 제품용으로 만들어진 관(管: tube·pipe)(예: **제16부**의 기계부분품)을 **제외한다**]. 이 제품은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서에서 언급된 철강으로 만든 제품과 상응한다.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주석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비스무트(bismuth)나 구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소	함유 중량 비율(%)
비스무트	0.1
구리	0.4

나. 주석합금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거나
- 2) 비스무트(bismuth)나 구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총설

이 류에는 주석(tin)과 그 합금과 이들의 특정 제품을 분류한다.

주석은 상업적으로는 제2609호에 분류하는 산화물 광석인 석석(錫石 : cassiterite or tin-stone)[또는 주석석(朱錫石 : tin-stone)]에서 채취되며 ; 이 광석은 광맥 중이나 층적층에서 산출된다.

주요한 제련공정은 다음과 같다.

(I) 세척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부유선광에 의한 정광의 제조

(II) 배소(焙燒), 자기선광(magnetic separation)이나 산(酸)이나 그 밖의 용제로 처리하여 황, 비소, 구리, 납, 철과 텅스텐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한 산화석의 제조

(III) 코크스(coke)로 순수한 산화석을 환원하여 조(粗)주석을 제련

(IV) 조(粗)주석을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해 정제하여 거의 완전한 순수 상태의 주석으로 제조

주석은 염료처리나 전해처리법에 의해 주석판 스크랩에서 회수하거나 주석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재용해에 의해 회수한다. 이러한 회수법에 의하여 매우 고순도의 주석을 생산할 수 있다.

*
* *

순수한 주석은 은백색으로 매우 빛난다. 연성(延性)은 매우 좋지 않지만 가단성(可鍛性)이 있고 쉽게 용융(溶融)되고 연하다(납보다는 딱딱하다). 쉽게 주조·해머링·압연이나 압출된다.

주석은 공기 중에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매우 좋으나 농축된 산(酸)에는 약하다.

*
* *

주석은 주로 다른 비금속(卑金屬), 특히, 철강의 도금용으로 사용하며(예: 주석판의 제조, 특히 캔 제조공업에 사용), 합금제조용(청동 등)으로 사용한다. 순수한 상태나 합금의 상태로서 다음과 같은 물품, 즉 식품공업용의 기기·관(管)류; 증류기 헤드; 냉동장치; 공업용의 저장 용기·탱크 등; 뿔질용 봉이나 선 등; 장식품과 식탁용품[예: 백랍(pewter)으로 만든 큰 컵]; 완구; 오르간의 관(pipe);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박(箔)이나 접을 수 있는 관(管) 형태로도 사용한다.

*
* *

제15부의 주 제5호의 규정(이 부의 총설 참조)에 따라 이 류에 분류하는 **주석의 주요한 합금**은 다음과 같다.

- (1) 주석-납 합금 : 연한 뿔질납 ; 큰 컵 ; 완구 제조 ; 일정한 용적 측정구용으로도 사용한다.
- (2) 주석-안티모니 합금 : 보통 구리(예: Britannia metal)를 함유하며 식탁용품, 베어링(bearing) 제조 등에 사용한다.
- (3) 주석-납-안티모니 합금 : 때때로 구리를 함유하며[예: 주석을 기본 재료로 하는 감마메탈(anti-friction metal)] 주조용[특히 베어링(bearing)]과 패킹(packing)으로 사용한다.
- (4) 주석-카드뮴 합금 : 때때로 아연을 포함하며 감마메탈(anti-friction metal)로 사용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주석의 껍질과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8001호와 제8002호)
- (B) 일반적으로 제8001호의 덩어리를 압연이나 압출하여 얻는 물품(제8003호와 제8007호) ; 주석가루와 플레이크(flake)(제8007호)
- (C) 관(管)과 그 연결구류(fittings)와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 제8007호에 해당되는 그 밖의 모든 주석 제품

*
* *

주석의 물품과 제품은 금속의 성질이나 겉모습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처리가 행하여 지는데, 이들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72류 총설의 끝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들이며, 이 처리가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복합 물품(composite articles)의 분류에 대해서는 제15부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다.

80.01 - 주석의 괴(塊)

8001.1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8001.20 - 주석 합금

이 호에는 블록(block)·잉곳(ingot)·피그(pig)·슬래브(slab)·바(bar)·스틱(stick)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과 주석의 과편·알갱이와 그와 유사한 물품으로 되어 있는 **주석의 괴**를 분류한다. 이 호의 대다수 물품은 주석 도금용·압연용이나 압출용·합금제조용·성형제품의 구조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주석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는 **제외한다(제8007호)**.

80.02 -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관한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주석 제조의 결과 생기는 슬래그(slag)·회(灰)와 그 밖의 잔재물(**제2620호**)
- (b)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주조한 잉곳(ingot)과 이와 유사한 괴(**제8001호**)

80.03 - 주석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제15부 주 제9호가목, 제9호나목과 제9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이들 제품은 구리로 만든 이와 같은 물품에 상응한다. 따라서 제7407호나 제7408호에 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도 준용한다.

주석을 기본재료로 한 용접용의 봉(일반적으로 압출하여 제조되며 일정한 길이로의 절단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플럭스(flux)로 도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도포된 봉은 **제외한다(제8311호)**.

이 호에 압연용이나 인발(引拔)용이나, 성형 제품의 재주조용에 사용하기 위한 주조된 봉도 **제외한다(제8001호)**.

[80.04]

[80.05]

[80.06]

80.07 -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분류하는 것들,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주석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통 · 저장용 탱크 · 드럼과 그 밖의 용기(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것**)
- (2) 치약 · 착색제와 그 밖의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 접을 수 있는 관(管)
- (3) 물병 · 쟁반 · 접시 · 큰 컵 · 사이펀헤드(syphon head)와 맥주 컵 뚜껑 등과 같은 가정용품과 식탁용품[보통 백랍(pewter)으로 만든 것]
- (4) 용적측정구(capacity measure)
- (5) 전기 도금용의 양극(제7508호 해설 (A)부분 참조)
- (6) 주석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제15부의 주 제8호나목 참조)
- (7) 주석의 판(plate) · 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 주석의 박(箔)(인쇄한 것이나 종이 · 판지 ·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 제품은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정의되어 있다.
- (8) 제15부 주 제9호마목에 규정한 주석으로 만든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제8003호**의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제8481호**의 탭 · 콕(cock) · 밸브(valve)가 부착된 연결구류, 특수 제품용으로 만든 관(管)(예: **제16부**의 기계부분품)은 **제외한다**]. 이 제품은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서에서 언급된 철강으로 만든 제품과 상응한다.

제 8 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총설

이 류에 분류하는 것은 다음의 비금속(卑金屬)과 그 합금과 그 제품으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A) 텅스텐[볼프람(wolfram)](제8101호), 몰리브덴(제8102호), 탄탈륨(제8103호), 마그네슘(제8104호), 코발트[코발트 매트(cobalt matte)와 그 밖의 코발트 제련의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제8105호), 비스무트(제8106호), 티타늄(제8108호), 지르코늄(제8109호), 안티모니(제8110호), 망간(제8111호)

(B) 베릴륨, 크로뮴, 하프늄, 레늄, 탈륨, 카드뮴, 게르마늄, 바나듐, 갈륨, 인듐과 니오븀(컬럼븀)(제8112호)

이 류에는 서멧(cermet)도 분류한다(제8113호)

이 류나 제15부의 전체 각각의 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금속(卑金屬)은 **제28류**로 분류한다.

이 류에 분류하는 대부분의 비금속(卑金屬)은 순수한 상태보다 주로 합금이나 탄화물의 형태로 사용한다. 이러한 합금의 분류에 관하여는 제15부의 주 제5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 금속 탄화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
* *

복합물품(composite goods)의 분류, 특히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의 분류는 제15부의 총설에 설명되어 있다.

제15부의 주 제8호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가루(powder)”가 정의되어 있다.

81.01 - 텅스텐(볼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 - 가루

- 기타

8101.94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8101.96 -- 선(線)

8101.97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1.99 -- 기타

텅스텐(tungsten)[볼프람(wolfram)] : 주로 볼프람 철광(철-망간-텅스텐산)과 회중석(텅스텐산 칼슘)으로부터 얻는다. 광석은 산화물로 전환이 되는데 즉, 이것은 전기로에서 수소에 의해서나 고온 도가니에서 알루미늄이나 탄소에 의해 환원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가루 상태의 텅스텐은 블록(block) 모양이나 바(bar) 모양으로 가압 성형되어 이것을 전기로에서 수소 증기로 소결(燒結)한다. 조밀하게 소결(燒結)된 붕은 기계적으로 타발되고 최종적으로 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해 시트(sheet)·바(bar)·형재(形材)·선(線)으로 된다.

텅스텐은 조밀한 강회색의 금속으로 녹는점이 높으며 깨어지기 쉽고 단단한 것이며, 또한 내식성(耐蝕性)이 높다.

텅스텐의 용도는 조명용 전구와 진공관의 필라멘트 ; 전기로(電氣爐) 용품 ; X선관의 대음극 ; 전기 접점 ; 전기 계측기나 시계의 비자성(非磁性) 스프링 ; 망원경용 렌즈의 헤어라인에 사용하며 ; 또한 수소 아크 용접(hydrogen arc welding)용 전극 등에도 사용한다.

그러나 텅스텐[보통 페로-텅스텐(ferro-tungsten) 상태. 제72류 참조]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특수강을 제조하는 것이다. 또한 텅스텐 탄화물 제조에도 사용한다.

*
* *

제15부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 분류하는 **주요 텅스텐 합금**은 소결(燒結)하여 제조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텅스텐-구리합금(예: 전기 접점용)

(2) 텅스텐-니켈-구리합금 : X선용 스크린·일정한 항공기용 부분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
* *

텅스텐(tungsten)[볼프람(wolfram)]은 다음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가루

(B) **가공하지 않은 금속(unwrought metal)**. 예: 블록(block) · 잉곳(ingot) · 소결(燒結: sinter)봉이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후자에 대해서는 제7204호 해설 참조) ;

(C) **가공한 금속(wrought metal)**. 예: 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해 제조된 바(bar) ; 프로파일(profile) · 판(plate)과 시트(sheet) · 스트립(strip)이나 선(線) ;

(D)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이나 **제82류**와 **제83류**에 포함되지 않은 제83류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과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제품**. 대부분의 텅스텐(tungsten) **제품**(스프링을 **제외한다**)은 실제로 **제16부**나 **제17부**에 분류하며 ; 예를 들면, 접점 제조용 텅스텐 판(tungsten plate)은 이 호에 분류하지만 완성된 전기접점은 **제85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절단 공구 · 다이스(dies) 등의 작용부분의 합과 단(working tips and blade) 제조에 사용하는 탄화텅스텐은 **제외한다**. 탄화텅스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제2849호**의 혼합하지 않은 가루

(b) **제3824호**의 조제되었지만 소결(燒結)되지 않은 혼합물[예: 몰리브데늄 탄화물이나 탄탈륨 탄화물과 혼합된 것(접결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 **제8209호**에 해당하는 공구용의 플레이트(plate) · 스틱(stick) · 팁(tip)과 이와 유사한 것[소결(燒結)되었으나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해당 해설 참조)

81.02 -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 - 가루

- 기타

8102.94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8102.95 --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8102.96 -- 선(線)

8102.97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2.99 -- 기타

몰리브데늄(molybdenum) : 은 주로 휘수연광(황화 몰리브데늄)과 몰리브데늄 연광(몰리브데늄 산납)으로부터 얻는데 광석을 부유선광에 의해 정광하여 산화물로 전환시킨 후 금속으로 환원 제련한다.

금속은 압연·인발(引拔) 등에 적합한 조밀한 모양으로나 텅스텐(tungsten)(제8101호 해설 참조)과 같이 소결(燒結)할 수 있는 가루 상태로 제련한다.

조밀한 상태의 몰리브데늄은 외관상 납과 유사하나 매우 단단하고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가단성(可鍛性)이 있으며 상온에서는 내식성(耐蝕性)이 있다.

몰리브데늄은 합금강 제조에 사용한다[제72류의 금속이나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으로]. 몰리브데늄 금속은 또한 조명 전구용의 필라멘트 지지선; 전자관의 그리드; 전기로(電氣爐) 용품; 정류기와 전기접점에 사용한다. 또한, 그것은 치과용품, 신변장식용품류 제조에 있어 플래티늄(platinum) 대용물(광택을 잃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임)로도 사용한다.

일반용도의 **몰리브데늄 합금**은 몰리브데늄의 함유량이 다른 금속보다 적으므로 제15부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한다**.

몰리브데늄의 제련법은 텅스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제8101호 해설의 두 번째 단락(유통되는 금속의 모양과 탄화물의 분류에 관한 것)은 이 호에도 준용한다.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기타

8103.91 -- 도가니

8103.99 -- 기타

탄탈륨(tantalum) : 주로 탄타라이트(tantalite)광과 니오브(niobite)광[콜럼브석(columbite)](제2615호)으로부터 추출되는데, 이는 산화물의 환원에 의하거나 용융(溶融)된 불화탄탈륨산칼륨(tantalum-potassium fluoride)의 전기분해(electrolysis)에 의해 제련된다.

이것은 텅스텐(tungsten)이나 몰리브데늄(molybdenum)과 같이 조밀 금속이나 소결(燒結)용 가루 상태로 제조되기도 한다.

탄탈륨가루는 흑색이지만 그 밖의 모양의 것은 연마하면 백색이고 연마하지 않으면 강청(鋼靑)색이다. 순수한 탄탈륨은 가단성(可鍛性)과 연성(延性)이 매우 풍부하다. 가끔 내식성(耐蝕性)과 내산성(耐酸性)이 있는 것이 있다.

탄탈륨은 탄화물 제조, 합금강의 제조[페로-탄탈륨(ferro-tantalum), 제72류 참조]에 사용한다. 또한 전자관의 그리드(grid)와 양극·정류기·도가니·열교환기와 그 밖의 화학용 기기·인조 섬유 추출용 방사구·치과용과 외과용의 기기에 사용하며, 외과용의 골정착용 물품 등과 게터(getter)(라디오용 진공관에 남아 있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것) 제조용에도 사용한다.

제15부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 분류하는 **탄탈륨 합금**은 탄탈륨의 함유량이 많은 탄탈륨-텅스텐(tantalum-tungsten)합금(예를 들면, 전자관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탄탈륨에는 여러 가지 형태, 즉, 가루·블록(block)·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봉(bar)·선(線)·필라멘트(filament) ; 시트(sheet)·스트립(strip)·박(箔) ; 프로파일(profile) ; 관(管)과 다른 호에 특별히 **열거하지 않는** 그 밖의 제품[예: 스프링(spring)과 와이어클로스(wire cloth)]의 것을 분류한다.

탄화 탄탈륨의 분류는 탄화 텅스텐의 분류를 따른다(제8101호 해설 참조).

81.04 -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괴(塊)

8104.11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8104.19 -- 기타

8104.2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4.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s) · 연삭설(tumings) · 알갱이, 가루

8104.90 - 기타

마그네슘(magnesium) : 제26류(광)가 아니라 제25류나 제31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원료로부터 추출된다. 예를 들면, 백운석(제2518호) · 마그네사이트(magnesite)[지오브타이트(giobertite)](제2519호) · 카날라이트(carnallite)(제3104호)이다. 또한 바닷물이나 자연염수(제2501호) 그리고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을 함유하는 찌꺼기에서 추출되기도 한다.

이 금속의 공업적 제법의 첫 단계에서는 사용하는 마그네슘 원천에 따라 각기 다른 제법에 의하여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이나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마그네시아(magnesia)]이 만들어진다. 이 금속을 압출할 때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 반응 중의 하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A) **용융(溶融 : fused)한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을 알칼리 금속의 염화물이나 불화물과 같은 용제와 혼합하여 **전기분해하는 방법** : 이때 분리된 마그네슘(magnesium)은 음극 주위의 전해조 표면에 집적되며 염소는 양극에서 회수된다.

(B) 탄소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 탄화규소 · 탄화칼슘(calcium carbide)과 알루미늄 등을 함유하고 있는 **마그네시아(magnesia)를 가열 환원시키는 방법** : 높은 온도에서 반응시키면 증류 금속으로 되는데 이를 급냉각하여 매우 순수한 상태로 응축시킨다.

전해법에 의하여 제조된 금속은 보통 그 이상의 정제가 필요하다. 가열 환원법에 의하여 얻은 마그네슘은 매우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정제하지 않고 용융(溶融)시켜 잉곳(ingot)으로 만든다.

*
* *

마그네슘은 알루미늄과 같이 은백색의 금속이지만 알루미늄보다는 가볍다. 이것은 고도의 광택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에 노출되면 아주 급속히 광택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침식을 방지시키기 위한 산화필름(oxide film)이 이 금속의 표면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으로 만든 선(線) · 스트립(strip) · 박(箔)과 가루는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맹렬히 연소되므로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미세한 마그네슘 가루는 공기와 혼합될 경우에는 폭발할 위험이 있다.

*
* *

합금하지 않은 마그네슘은 많은 화합물의 조제에 사용한다. 즉, 야금(冶金)공업[예: 철·구리·니켈(nickel)과 그 합금의 제조]에서의 탈산제(脫酸劑)와 탈황제(脫黃劑)·불꽃 제조술 등에 사용한다.

순수한 마그네슘은 기계적 성질이 빈약하나 다른 원소와 결합되어 압연·단조(鍛造)·압출과 주조 등의 가공을 할 수 있는 강한 합금으로 되며, 따라서 경금속 공업 분야에서 용도가 많다.

*
* *

제15부의 주 제5호의 규정(이 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류에 분류하는 **주요 마그네슘 합금**은 다음과 같다.

- (1) 마그네슘-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알루미늄-아연합금(가끔 망간을 함유하고 있다) : 이것들은 “엘렉트론(Elektron)”이나 “다우(Dow)”메탈형의 합금에 기초를 둔 마그네슘이다.
- (2) 마그네슘-지르코늄합금(가끔 아연을 함유하고 있다)
- (3) 마그네슘-망간이나 마그네슘-세륨합금

이들 합금은 가볍고 강인하고 내식성(耐蝕性)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다. 즉, 항공기공업(예, 엔진 케이스·바퀴·기화기·자석·발전기대·오일 탱크) ; 자동차 공업 ; 건축 ; 기계부분품과 그 부속품의 제조와 특히 직조기[스핀들(spindle)·보빈(bobbin)·와인더(winder) 등]·공작기계·타자기와 재봉기·체인톱(chain saw)·예초기·사닥다리나 재료취급 장비나 인쇄용 석판 등의 제조

*
* *

마그네슘 제품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제72류의 총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처리 즉, 마그네슘의 성질과 겉모습 등을 개량하기 위한 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잉곳(ingot)·V자형 봉(notch bar)·슬래브(slab)·스틱(stick)·케이크 모양·입방체 모양·빌릿(billet)과 이와 유사한 모양의 **마그네슘의 괴(unwrought magnesium)**.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압연·인발(引拔)·압출이나 단조(鍛造)나 성형품의 주조에 사용한다.
- (2) **마그네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제7204호에 대한 해설이 이 호에도 준용된다.

이 그룹에는 크기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줄밥(raspings)·연삭설(turnings)과 알갱이를 분류한다. 크기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줄밥, 연삭설과 알갱이의 분류는 다음 그룹(3)에 설명되어 있다.

(3) 봉(bar) · 프로파일(profile) · 판(plate) · 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 박(箔) · 선(線) · 관(管)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일정한 크기의 줄밥(raspings) · 연삭설(turnings)과 알갱이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형태의 마그네슘(Magnesium) 제품을 분류한다.

(a) 위 그룹(1)의 제품을 압연 · 인발(引拔) · 압출 · 단조(鍛造) 등을 하여 얻어진 제품[즉, 가공한 봉(bar)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 판(plate)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 박(箔)] ; 관(管)과 프로파일(profile)[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의 유사 제품에 관한 호의 관련 해설 참조]

이 물품들은 가볍고 강한 재료가 필요한 제품에 사용한다(위의 설명 참조).

(b) 일정한 크기의 줄밥(raspings)과 연삭설(turnings)과 알갱이와 여러 가지 형태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이 제품은 불꽃 제조술(불꽃제품 · 신호용품 등)의 제조, 화학공업이나 야금(冶金)공업의 환원제 등으로 사용한다. 줄밥(raspings)과 연삭설(turnings)과 알갱이는 앞에서 설명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조되고 등급을 매긴 것이다.

(4) 그 밖의 제품

이 그룹에는 앞에 설명한 그룹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나 제82류나 제83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는 것 이외의 모든 마그네슘 제품을 분류한다.

마그네슘은 주로 항공기 · 차량과 기계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며(위의 설명 참조) 많은 마그네슘 제품이 다른 류(특히 제16부와 제17부)에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구조물과 그 부분품

(b) 기계장치나 가열 냉각장치가 붙어있지 않은 저장용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와 통 · 드럼과 캔

(c)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d)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루 등

이 호에는 마그네슘 제조 공업에서 생성되는 슬래그(slag) · 회(灰)와 잔재물을 제외한다(제2620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104.11호와 제8104.19호

이들 소호에는 또한 재용융(再溶融)된 마그네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주조된 잉곳(ingot)과 이와 유사한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것이 분류된다.

81.05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8105.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5.90 - 기타

코발트(cobalt) : 주로 헤테로지나이트(heterogenite)광(코발트의 수산화물), 린니아이트(linnaeite)광(코발트와 니켈의 황화물)과 스몰타이트(smaltite)광[코발트의 비화물(砒化物) : cobalt arsenide]으로부터 얻는다. 황화물과 비화물을 용융(溶融)하면 매트(matte)와 그 밖의 중간생산물이 생성된다. 다른 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를 하면 산화코발트(cobalt oxide)가 얻어지는데, 이를 탄소·알루미늄 등으로 환원한다. 이 금속은 또한 전기분해법에 의해서 추출되며, 구리·니켈·은 등을 정제할 때 생기는 잔유물을 처리함으로써 추출되기도 한다.

코발트(cobalt)는 은색을 나타내며 내식성(耐蝕性) 금속으로 니켈보다 단단하며, 비철금속 중에서 가장 자성(磁性)이 강하다.

순수한 상태에서는 그 용도는 다른 금속의 도포(coating)(전기도금에 의해), 촉매, 금속탄화물로 만든 절삭공구 제조할 때의 결합제(binder), 코발트사마륨 마그네트(cobalt samarium magnet)나 특정한 합금강 등의 구성요소로 사용한다.

코발트(cobalt) 합금이 많은데 ; 제15부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코발트-크로뮴-텅스텐계의 것("Stellite")(종종 다른 원소를 조금 함유한다). 이들은 고온에서 내마모성(耐磨耗性)과 내식성(耐蝕性)이 있기 때문에 밸브(valve)와 밸브시트(valve seat)·공구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 (2) 코발트-철-크로뮴합금 : 열팽창률이 낮고 자성(磁性)이 강하다.
- (3) 코발트-크로뮴-몰리브덴합금 : 제트엔진(jet engine)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코발트 매트(cobalt matte), 그 밖의 코발트 야금(冶金)의 중간 제품, 여러 가지 형태의 코발트, 예를 들면, 잉곳(ingot), 음극(cathode), 알갱이, 가루,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다른 곳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분류한다.

81.06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10 - 비스무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를 초과하는 것

8106.90 - 기타

이 금속은 천연의 상태로 산출되지만 주로 납·구리 등을 정제할 때 생기는 잔유물을 정제하거나 황화광이나 탄소염광[예: 비스무티나이트(bismuthinite)와 비스무타이트(bismutite)]으로부터 추출하여 얻는다.

비스무트(bismuth) : 연분홍색을 띤 백색이며 부서지기 쉽고 가공하기 힘들며 전도율이 낮다. 이것은 과학기기와 의료용의 화학약품 조제에 사용한다.

제15부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가용성(可融性 : fusible) 합금** [일부는 녹는점이 섭씨 100℃ 이하]을 형성한다.

- (1) 비스무트-납-주석합금[때로는 카드뮴 등을 포함한다](예: Darcet 합금·Lipowit 합금·Newton 합금이나 Wood 합금) : 땀질납·주조합금·소화기용 가용성(可溶性) 요소·보일러(boiler) 등에 사용한다.
- (2) 비스무트-인듐-납-주석-카드뮴합금 : 외과용의 형(cast)을 뜨는데 사용한다.

[81.07]

81.08 -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8108.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8.90 - 기타

티타늄(titanium) : 금홍석(金紅石 : rutile)이나 브루카이트(brookite)를 환원하여 얻거나, 일메나이트(ilmenite : 타탄철광)으로부터 얻는다. 제련법에 따라 조밀한 모양으로 소결(燒結)용의 가루 상태(텅스텐의 경우에서처럼), 페로-티타늄(ferro-titanium)(제72류)이나 탄화티타늄으로 제조된다.

티타늄은 조밀한 모양일 때는 백색으로서 번쩍거리지만 가루 상태일 때는 암회색이다. 내식성(耐蝕性)이 있으며, 단단하고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을 때는 단단하고 깨어지기 쉽다.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콘-티타늄(ferro-silicon-titanium)(제72류)은 강(鋼) 제조에 사용하며 ; 또한 알루미늄·구리·니켈 등과 합금이 된다.

티타늄은 주로 항공산업·조선업에서 이용되며, 화학공업용의 배트(vat)·교반기·열교환기·밸브(valve)와 펌프(pump)의 제조용·해수의 염분 제거용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에 이용된다.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sponge)·잉곳(ingot)·가루·양극·봉(bar·rod)·시트(sheet)와 판(plate)·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헬리콥터 로터(rotor)나 프로펠러 날개(propeller blade)·펌프(pump)나 밸브(valve)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이나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하는 것 **이외의** 물품을 분류한다.

탄화물(carbide)의 분류는 탄화 텅스텐(tungsten carbide)의 분류에 따른다(제8101호 해설 참조).

81.09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8109.2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8109.29 -- 기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9.3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8109.39 -- 기타

- 기타

8109.9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8109.99 -- 기타

지르코늄 : 규산염광 · 지르콘(zircon)을 전기분해하거나, 이들의 산화물 · 염화물 등을 환원시켜서 얻어진다.

이것은 은회색의 금속으로 가단성(可鍛性)과 연성(延性)이 있다.

이것은 사진섬광용 벨브(blubs)에서 사용되고, 라디오벨브 제조에서 진공관의 게터(getter)나 흡수기 제조용에 사용한다. 페로-지르코늄(ferro-zirconium)(제72류)은 강(鋼) 제조에 사용하며, 니켈 등과의 합금 제조용에도 사용한다.

지르코늄은 단독으로나 주석과의 합금("zircalloy")의 상태로 원자로 연료용 카트리지(cartridge)의 쉬드(sheaths)와 원자력 발전소의 금속 구조물 제조에 사용한다. 지르코늄(zirconium)-플루토늄(plutonium) 합금과 지르코늄(zirconium)-우라늄(uranium)합금은 핵연료로 사용한다. 원자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선 하프늄(hafnium)을 미량(微量)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1.10 -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8110.2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10.90 - 기타

안티모니(antimony) : 주로 휘안광(stibnite : 황화광)으로부터 다음 방법에 의해 얻어진다.

- (1) 소위 “거친 안티모니(crude antimony)”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축(concentration)과 용리(溶離 : liquation)에 의하며, 이것은 실제로 **제2617호**에 속하는 가공하지 않은 황화물이다.
- (2) 용융(溶融)하여 “싱글(single)”(regulus)로 알려진 불순물을 함유한 안티모니를 만든다.
- (3) 더욱 더 용융(溶融) 제련을 하여 “스타볼(star bowls)”로 만들어 이를 정제하면 가장 순수한 모양의 “스타안티모니(star antimony)”나 “프랑스메탈(French metal)”로 된다.

안티모니(antimony)는 푸른색을 옅게 띤 빛이 나는 백색 금속으로 깨어지기 쉽고 쉽게 가루 상태로 된다.

비합금의 상태로는 거의 쓰이는 곳이 없으나 합금(특히 납과 주석과의 합금)은 단단하며 베어링 합금·인쇄용 활자·그 밖의 주조용 합금·백랍(pewter)·브리타니아메탈(Britannia metal) 등 제조용에 사용한다(이러한 합금은 납이나 주석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제78류**와 **제80류**에 해당되므로 이를 참조한다).

81.11 -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망간(manganese) : 산화광(oxide ore) · 연망간광(pyrolusite) · 브라운광(braunite)과 망간석(manganite)을 환원함으로써 추출되며, 또한 전기분해에 의하여도 얻어진다.

망간 자체는 회색빛이 있는 핑크색으로 단단하고 깨어지기 쉬우며,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

그러나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 페로-망간(ferro-manganese) · 실리코-망간(silico-manganese) · 합금주철(cast iron)과 합금강의 구성요소로 사용하며 ; 이들 물품은 보통 제72류에 해당되지만 페로-망간(ferro-manganese)과 실리코-망간(silico-manganese)이 때로는 철의 함유량이 매우 낮을 때[제72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에는 이 호에 해당된다. 망간은 구리 · 니켈 · 알루미늄 등과 합금되어지기도 한다.

81.12 - 베릴륨 · 크로뮴 · 하프늄 · 레늄 · 탈륨 · 카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인듐 · 니오븀(컬럼븀)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베릴륨

8112.12 -- 괴(塊), 가루

8112.13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12.19 -- 기타

- 크로뮴

8112.21 -- 괴(塊), 가루

8112.22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12.29 -- 기타

- 하프늄

8112.3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39 -- 기타

- 레늄

8112.4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49 -- 기타

- 탈륨

8112.51 -- 괴(塊), 가루

8112.52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12.59 -- 기타

- 카드뮴

8112.61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12.69 -- 기타

- 기타

8112.92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99 -- 기타

(A) 베릴륨(beryllium)

베릴륨(beryllium) : 귀석(예: 에메랄드)의 상태로 있을 때를 제외하고(제71류), 제2617호에 분류하는 베릴륨과 알루미늄의 규산복염(複鹽)인 녹주석(beryl)으로부터 거의 대부분이 얻어진다.

이 금속의 상업적 추출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 (1) 베릴륨산불화물(beryllium oxyfluoride)(광석에서 제조된 것)과 바륨(barium)이나 그 밖의 불화물과의 혼합물을 **고온 하에서 전기분해하는 방법**. 이때 흑연으로 만든 도가니는 양극으로 사용하며 베릴륨은 수냉(水冷)한 철로 만든 음극에 집결된다.

(2) 마그네슘(magnesium)을 사용하여 **베릴륨불화물(beryllium fluoride)을 환원시키는 방법**

*
* *

베릴륨은 스틸그레이(steel-grey)의 금속이며, 매우 가볍고 견고하나 부서지기가 아주 쉽다. 이것은 다만, 매우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압연이나 인발(引拔)될 수 있다.

*
* *

비합금 베릴륨(unalloyed beryllium)은 X-선관의 창(窓)의 제조용 ; 핵반응기의 구성요소 ; 항공과 우주산업 ; 무기산업 ; 사이클로트론(cyclotrons)의 표적 ; 네온사인(neon sign) 등의 전극, 야금(冶金)공업의 탈산제(脫酸劑)로 사용한다.

비합금 베릴륨은 또한 다수의 합금의 제조에 사용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鋼)과의 합금[스프링강(spring steel) 등] ; 구리와 합금[예: 스프링 · 시계부분품이나 공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베릴륨 구리로 알려진 합금] ; 그리고 니켈(nickel)과의 합금. 그러나 이 합금은 단지 아주 소량의 베릴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72류, 제74류나 제75류**에 각각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베릴륨, 즉 금속[예: 블록(block) · 펠릿(pellet) · 큐브(cube) 등]과, 물품[봉 · 선(線) · 시트(sheet) 등]과 제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기계부분품, 기구의 부분품 등으로 특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특히 **제85류와 제90류** 참조).

(B) 크로뮴(chromium)

크로뮴(chromium) : 주로 크로마이트(chromite : 크롬철광)에서 추출되는데 이것은 세스키 옥사이드(sesquioxide)로 전환된 후, 크로뮴 금속을 생산하기 위해서 환원된다.

크로뮴은 연마하지 않았을 때는 스틸그레이(steel-grey)이지만 연마하였을 때는 백색으로 빛을 낸다. 매우 단단하고 내식성(耐蝕性)이 있지만 가단성(可鍛性)이나 연성(延性)은 별로 없다.

순수한 크로뮴은 다른 금속의 여러 가지 제품의 피복물(被覆物)(전기크로뮴도금)로 된다. 주용도 [보통 페로크로뮴(ferro-chrome), 제72류 참조]는 스테인리스강 제조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금 [예: 니켈이나 코발트를 함유한 것]은 제15부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한다**.

특정 크로뮴을 기본재료로 한 합금은 제트엔진 · 전열기구의 보호용 튜브(tube) 등에 사용한다.

(C) 게르마늄(germanium)

게르마늄(germanium) : 아연을 제조할 때의 잔유물 · 게르마나이트(germanite)광석[구리 게르마늄-황화물]과 가스 공장의 가스 도관에서 생기는 더스트(dust)로부터 추출된다.

이것은 회백색의 금속으로 특정한 전자 이온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자 부분품의 제조[예: 다이오드(diodes) · 트랜지스터(transistor) · 전자관]에 사용한다. 또한 주석 · 알루미늄과 금의 합금에도 사용한다.

(D) 바나듐(vanadium)

바나듐(vanadium) : 보통 산화물의 환원법에 의해서 파트론광(patronite)이나 카르노광(carnotite)으로부터나 철 · 라듐(radium)이나 우라늄(uranium)을 제조할 때 생기는 잔유물로부터 주로 추출된다. 금속 자체로서는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제72류)이나 구리-바나듐 모합금(master alloy)(제74류)으로 제조되고 ; 이들은 강(鋼) · 구리 · 알루미늄 등과의 합금 제조에 사용한다.

(E) 갈륨(gallium)

갈륨(gallium) : 알루미늄·아연·구리와 게르마늄을 추출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가스 공장의 가스 도관에서 생기는 더스트(dust)로부터 얻는다.

이것은 연하고 회백색의 금속으로 섭씨 약 30°C에서 녹으며, 높은 기화(氣化)점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상당한 온도범위 내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므로 온도계와 증기아크(vapour arc) 등에 있어서 수은의 대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또한 치과용 합금과 특수한 거울의 은 도금재(silvering)로 사용한다.

(F) 하프늄(hafnium)

하프늄(hafnium) : 지르코늄(zirconium)과 동일한 광석[지르콘(zircon) 등]으로부터 추출되며, 지르코늄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저속 중성자(slow neutrons)의 흡수율이 특히 높으므로 원자로의 통제와 모니터용 봉의 제조에 사용한다.

(G) 인듐(indium)

인듐(indium) : 아연 잔유물로부터 추출된다.

연(軟)하고 은색의 금속으로 내식성(耐蝕性)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금속을 도장하기 위하여 단독으로나 아연 등과 함께 사용한다. 비스무트(bismuth)와의 합금·납과의 합금이나 주석과의 합금(외과용의 형을 뜨는데 사용하는 합금)·구리나 납과의 합금[베어링(bearing)용 합금]과 금과의 합금(신변장식용품·치과용 합금 등)에 사용한다.

(H) 니오븀(niobium)[콜롬븀(colombium)]

니오븀(niobium) : 니오븀광(niobite)[콜롬바이트(columbite)]과 탄탈광(tantalite)으로부터 얻는데 이는 불화칼륨니오븀(niobium-potassium fluoride)을 얻기 위한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전기분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다.

이것은 은회색 금속으로 게터(getter)(라디오용 밸브를 제조할 때 가스의 마지막 흔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 제조용에 사용한다.

니오븀(niobium)과 합금철(ferro-alloy)(제72류)은 역시 강(鋼)과 그 밖의 합금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I) 레늄(rhenium)

레늄(rhenium) : 몰리브덴·구리 등을 추출할 때 부산물로 얻어진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도금용과 촉매로서의 용도를 생각할 수 있다.

(K) 탈륨(thallium)

탈륨(thallium) : 황철광과 그 밖의 광석을 처리할 때 생기는 그 잔유물로부터 추출된다. 연한 금속으로 납과 유사한 회백색을 나타낸다.

납과의 합금[녹는점·강도·내식성(耐蝕性)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과 은과의 합금(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이 있다.

81.13 -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서멧(cermet)은 세라믹 성분[내열성과 높은 녹는점을 가진 것]과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제조방법과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세라믹 성분과 금속 성분과 관계가 있으므로 **서멧(cermet)**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세라믹(ceramic) 성분은 보통 산화물·탄화물·붕화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 성분은 철·니켈·알루미늄·크로뮴·코발트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멧(cermet)은 소결(燒結), 분산(dispersion)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된다.

주요한 서멧(cermet)은 다음 물품으로부터 얻어진다.

- (1) 금속과 산화물 : 예를 들어, 철-마그네슘(iron-magnesium) 산화물 ; 니켈-마그네슘(nickel-magnesium) 산화물 ; 크로뮴-알루미늄(chromium-aluminium) 산화물 ; 알루미늄-알루미늄산화물
- (2) 지르코늄(zirconium) 붕화물이나 크로뮴(chromium) 붕화물 ; 이들 물품은 보롤라이트(borolites)로 알려져 있다.
- (3) 지르코늄(zirconium)·크로뮴(chromium)·텅스텐(tungsten) 등의 코발트(cobalt)·니켈(nickel)이나 니오븀(niobium)과의 탄화물
- (4) 탄화붕소와 알루미늄 : 보랄 서멧(boral cermet)으로 알려진 알루미늄 클래드(clad) 물품

이 호에는 서멧(cermet)의 괴(塊)와 이 표의 다른 호에서 열거하지 않는 제품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서멧(cermet)은 항공기 산업과 원자력 산업과 미사일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용광로와 금속주물 공장[예: 포트(pot)·흙통·관(管)]·베어링·브레이크-라이닝(brake-lining)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핵분열성(fissile)이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서멧(cermet)(**제2844호**)
- (b) 소결(燒結)에 의해 응집된 탄화 금속을 기본 재료로 한 서멧(cermet)으로 만든 공구용의 판(plate)·스틱(stick)·팁(tip)과 이와 유사한 것(**제8209호**)

제 8 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blow lamp)·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가. 비금속(卑金屬)
 -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나 전기이발기의 두부(頭部)·날·절삭판은 제8510호로 분류한다.
3.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공구·도구·칼붙이·식탁용품 등의 성격을 갖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특수한 제품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제15부의 이 류 이전에 열거된 류에서 제외하는 것과 제16부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류나 기기(아래 참조)와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구나 장치가 아닌 것과 제9603호나 제9604호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특정 예외물품(예: 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
- (B)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제8206호)
- (C) 수공구용·기계공구용이나 동력구동식 수공구용의 호환성공구(제8207호)·기구용이나 기계용의 칼이나 날(제8208호) 및 공구용 판(plate)·스틱(stick)·팁(tip)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8209호)

(D) 칼붙이(직업용·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기계식 가정용기구·스푼·포크(fork)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제8210호부터 제8215호)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구가 기어(gear)·크랭크핸들(clank-handle)·플런저(plunger)·스크루 메카니즘(screw mechanism)이나 레버(lever) 등과 같은 간단한 기구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용구들이 작업대·벽 등에 고정하도록 설계된 것, 중량·크기나 그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힘의 정도에 따라 상(床)·작업대 등에 놓기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스탠드(stand)·지지용 프레임(supporting frame) 등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제84류**로 분류한다.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로서 지지물이 없이 사용자가 손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간단한 기어 기구를 갖추고 있다라도 제8205호의 공구에 분류하며 ; 다른 한편 스탠드(stand)나 지지용 프레임(supporting frame)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드릴(drill)은 **제8459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플라이어(plier)형의 금속절단용 전단기(shear)는 제8203호에 분류하나, 스탠드나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에 설치된 길로틴(guillotine)형의 전단기(shear)는 수동식이라도 **제8462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기준에는 어떤 기기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바이스(vice), 프레임을 갖춘 연마기와 휴대용 화덕은 특히 제8205호에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계적 용구(커피 분쇄기·주스 추출기·육절기 등)는 특히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제8210호에 분류한다(아래 관련해설 참조). 한편, 액체나 가루의 분무용 기기(**제8424호**)·압축공기식 공구(**제8467호**)·피스톨형이 아닌 사무용의 스테이플링기(stapling machine)(**제8472호**)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지식 기구는 특히 **제84류**에 포함되며, 그 중의 어떤 것은 아주 작은 기기로서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나 지지용 프레임(supporting frame)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
* *

공구·칼붙이 등은 날, 작용하는 단(edge), 작용하는 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제2849호 해설 참조)이나 서멧(cermet)(제8113호 해설 참조)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이 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루·몸체 등과 결합된 것으로서 그 비금속(非金屬) 부분이 금속으로 만든 작용 부분의 중량을 초과하더라도 이 류에 포함한다(예: 금속으로 만든 날을 갖춘 나무로 만든 대패).

이 류에는 천연의 것·합성이나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예: 흑색 다이아몬드)으로 된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으로 만든 지지물에 결합된 공구도 포함되며 ; 어떤 경우에는 작용하는 부분이 연마 재료를 부착하거나 피복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은 해당 호에 특별히 포함한 물품[예: 휴대용 화덕과 프레임을 갖춘 글라인딩휠(grinding wheel)]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제6804호**에는 글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연삭용(研削用 : grinding)이나 절단용의 휠·헤드(head)·디스크(disc)와 포인트(point)를 포함한다]으로서 천연돌로 만든 것·응결한 연마 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제의 것(그 밖의 재료로 된 코어(core)·축(shank)·소켓(socket)·액슬(axle)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프레임(frame)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마 재료를 부착한 공구로서는 극히 일부의 것이 이 류의 범위에 해당한다(제8202호와 제8207호의 해설 참조).

제15부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수공업용·기계식 공구용이나 동력구동식 수공구용의 호환성 공구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주 제1호에 규정한 재료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예: 작용하는 부분을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제42류**, 모피로 만든 것은 **제43류**, 코르크로 만든 것은 **제45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은 **제59류**, 도자제의 것은 **제6909호**에 분류하며 기계용의 브러시는 **제9603호**에 분류한다.

공구·칼붙이 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톱의 프레임과 대패용의 날)은 해당 완성품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부분품이 별도로 열거된 것과 체인(chain)·못·볼트·너트·스크루(screw)·리벳(rivet)·스프링(예: 전지가위용의 것)과 그 밖의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

제8208호부터 제8215호까지에 분류하는 칼붙이와 그 밖의 물품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예: 모노그램(monogram)이나 밴드(band)]의 작은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 그러나 이것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다른 부분(예: 손잡이나 날)이 부착되어 있거나 진주(천연·양식)·귀석·반귀석(천연의 것·합성·재생한 것)(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작용하는 부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제71류**로 분류한다.

*
*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내과용·치과용·외과용·수의과용의 공구·가위와 그 밖의 칼붙이(**제9018호**)
- (b) 명백하게 완구의 성격을 갖는 공구(**제95류**)

82.01 -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올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8201.10 - 가래와 삽

8201.30 -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8201.4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201.50 -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201.60 - 올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201.9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공구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에 사용하는 수공구(hand tool)를 분류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예: 도로작업·토목공사·광업·석공·목공이나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가정용 석탄 삽과 특수한 모양의 것을 포함하는 **가래와 삽**(예: 야영자용과 군대용 등의 참호 파는 도구)
- (2) **포크**(건초용 쇠스랑을 포함한다)
- (3) **곡괭이·픽스(pick)·괭이·쇠스랑**(잔디용 갈퀴·호미와 갈퀴가 결합된 것·뿌리와 그루터기를 파는 연장·제초기와 경운기를 포함한다)
- (4)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벌목용 도끼·손도끼·자귀(hatchet)·초파(chopper)·자귀(adze)·슬래셔(slasher)와 매칫(matchet)을 포함한다]
- (5) **전지가위(secateur)와 이와 유사한 한 손용 전지가위(one-handed pruner and shear)** [가금(家禽 : poultry)용 가위를 포함한다] : 이들은 보통 그 길이의 약 4분의 3 지점의 중심점에서 연결된 두 개의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하나의 손잡이는 오목(凹)형이며 다른 하나는 볼록(凸)형의 절단면으로 이어지며[“앵무새부리(parrot bill)”]; 이 가위는 손잡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제8213호**에 해당하는 가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스프링이 있어서 절단 후 손잡이가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하며, 한 손으로 손잡이가 쉽게 개폐되도록 훅(hook)이나 그 밖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절단할 때에는 이들은 한 손으로 조작되며 또한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정원용 전지가위, 화초·과실용 전지가위 ; 좁고 끝이 뾰족한 날을 지닌 포도원용 전지가위를 포함한다.

단, 이 호에는 손가락 구멍이 있는 전지용 날을 가진 전지가위 형태의 가위는 **제외한다(제8213호** 해설 참조).

(6) **올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pruning shear)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폴전단용 가위와 절단용 가위를 포함한다)

(7)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그 밖의 수공구**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큰 낫·작은 낫(자루에 넣는 것, 곡식 등을 베는 것이나 풀을 베는 것을 포함한다)과 여러 가지의 건초와 벚짚을 베기 위한 칼 ; 과종기·채종기·묘목 이식에 쓰는 구멍 파는 도구·흙손과 이식기 ; 과일 채취기 ; 소(牛)빗·말(馬)빗과 돼지 굽는 도구 ; 나무 껍질을 벗기는 도구와 나무껍질 벗기는 칼 ; 제재용 췌기·목재업자용의 목재 운반용 도구(log hook·log tongs·log pick·cant hook) ; 잔디 깎는 도구 ; 양털 깎는 기기

이 호의 모든 도구는 자루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앞에서 설명한 도구와 동일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양의 귀나 그 밖의 동물의 귀에 표시를 하는 플라이어(plier)(제8203호)

(b) 할석용(割石用 : stone splitting)의 췌기 ; 낫의 날을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엔빌(anvil)(제8205호)

(c) 전지용 칼(제8211호)

(d) 정원용 롤러·씨레(harrows)·풀 베는 기계(hay or grass mowers)와 이와 유사한 도구(손으로 밀고 당기는 것을 포함한다)(제84류)

(e) 얼음 깨는 도끼(제9506호)

82.02 -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 · 슬로팅(slotting) ·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 수동식 톱

8202.20 - 띠톱의 날

-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202.3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202.40 - 체인톱의 날

- 그 밖의 톱날

8202.91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8202.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목재 · 금속 · 석재와 그 밖의 재료에 사용하는 **수동식 톱**(직업용인지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활 모양의 톱(saw) · 핵 톱(hack saw) · 프렛 톱(fret saw)와 그 밖의 톱(saw)(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프레임이 부착된 것) ; 패널 톱(panel saw) · 백 톱(back saw)이나 테넨 톱(tenon saw)와 컴퍼스 톱(compass saw) ; 가로키는 톱[보통 각 끝부분에 손잡이가 있는 것] ; 원예사나 광부가 사용하는 칼과 같이 생긴 톱(접는 식인지에 상관없다) ; 시계상과 보석상이 사용하는 특수한 톱 ; 만능톱 ; 야영용 · 군대용 등의 연결된 톱 ; 베니어톱(veneer saw) ; 모서리를 이은 상자에 영구히 결합된 톱(톱이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

(B) 수동식 톱용 · 기계식 톱용 · 모든 종류의 각종 **톱날**(어떤 재료에 사용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띠톱(band saw)과 엔드리스 톱(endless saw)의 날(예: 제재기계용의 톱날)

(2) 밀링기에 사용하는 **원형의 톱날[슬리팅(slitting) 톱날과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 이들은 밀링 커터(milling cutter)의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율에 의하여 밀링 커터와 구별되는데 직경이 밀링 커터의 경우보다 얇으며 보통의 원형식 톱과 같이 원주 상에만 절단용의 톱니가 있다는 점에 의하여서도 구별된다. 밀링 커터는 흔히 그 표면에 톱니(齒 : teeth)가 있거나 요철형의 이를 갖고 있다.

(3) 목재의 벌채용 · 절단용 등으로 사용하는 **체인 톱날**(체인 형태로 되어 있다) : 보통 이러한 톱날의 잇날은 금속 탄화물이나 서멧(cermet)을 재료로 하며 구성된다.

- (4) 패널 톱(panel saw) · 테닌 톱(tenon saw) · 핵 톱(hack saw) 등에 사용하는 **직선형 톱날** : “필리그리 톱(filigree saw)”로 알려진 세선가공용 톱날[프렛 톱(fret saw)의 날과 같은 방법으로 톱질하는데 쓰이며 줄(file)과 같은 톱니(齒 : teeth)가 달린 원형의 날]도 포함한다.
- (5) **톱니(齒)가 없는 석재절단용 톱날**(안전한 평판 모양이나 물결 모양으로 해머나 기계에 의하여 가공한 것) : 선단에 부착용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나 고정시키기 위한 다른 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6) **톱니(齒)가 없는 절단용 원반(toothless cutting disc : friction disc)(금속으로 절단)**

이 호에는 **톱날의 블랭크(blank)**도 포함한다. 톱니(齒)가 있는 한, 스트립(strip) 모양(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것과 원반[구동축에 디스크(disc)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것]은 블랭크(blank)로 취급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고탄소를 함유한 강철로 만들어진다.

톱날은 톱 자체에 톱니(齒)를 갖고 있거나, 삽입된 이(齒)나 세그먼트(segment)(어떤 종류의 원형식 톱의 경우와 같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톱니는 전체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나 비금속(卑金屬)에 금속 탄화물 · 다이아몬드(특히 흑색 다이아몬드)나 어떤 경우에는 연마 재료의 가루를 부착시키거나 피복한 것이 있다. 어떤 종류의 톱니는 디스크(disc) 원주에 세트된 다이아몬드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요소로 대치된 것도 있다.

연마 재료로 만든 림(rim)이 부착된 톱니(齒)가 없는 디스크(예: 대리석 · 석영이나 유리 절단용의 것)나 연마재료를 원주상에 연속하여 삽입한 톱니(齒)가 없는 디스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804호 해설 참조)**.

이 호에는 수동식 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프레임 · 활 · 자루 · 신장구)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톱니와 톱날에 삽입하는 톱니(齒)를 붙인 세그먼트(segment)가 단독으로 제시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석재를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스트랜드(strand)[보통 특수강의 선(線)을 세가닥으로 꼰 것](**제7312호**)
- (b) 모티싱(morticing)용의 체인 커터(chain cutter)(**제8207호**)
- (c) 모터를 갖춘 수동식 톱(**제8467호**)
- (d) 뮤지컬 소(musical saw)(**제9208호**)

82.03 - 줄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 · 금속 절단용 가위 · 파이프커터(pipe-cutter) · 볼트크로퍼(bolt cropper) · 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8203.2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8203.3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203.40 - 파이프커터(pipe-cutter) · 볼트크로퍼(bolt cropper) · 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이 호에는 다음의 수공구를 포함한다.

(A) 금속 · 목재나 그 밖의 재료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평판 · 원형 · 반원형 · 사각형 · 삼각형 · 타원형)과 여러 가지 규격의 **줄(file) · 이(齒 : teeth)가 거친 줄(rasp)과 유사한 공구**[결합된 줄(file-rasp)을 포함한다]

(B) **플라이어(pliers)[절단용 플라이어(pliers)를 포함한다] · 집게(pincer) · 핀셋(tweezer)과 이와 유사한 공구**,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라이어[예: 봉합기와 봉합용 플라이어(plier) · 양의 귀와 그 밖의 동물에 표를 하는 플라이어 · 가스관용 플라이어 · 코터 핀(cotter pin)을 삽입하거나 추출하는 플라이어 · 아이릿(eyelet)을 삽입하거나 부착시키는 플라이어 ; 플라이어형 톱 세트]

(2) 집게(pincers)[예: 편자공용 집게(farriers' tongs)와 대장간용 집게(smiths' tongs)]

(3) 핀셋(tweezers)(시계상용 · 화초재배자용 · 우표수집가용 · 탈모용 등)

(4) 못뽑이[조(jaw) 타입, 집게의 원리로 작동한다]

(C)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함석공용의 가위와 그 밖의 금속판이나 금속선 절단용의 가위를 포함한다)

(D) **파이프커터(pipe-cutter) · 볼트크로퍼(bolt cropper) · 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플라이어(plier)형]** :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커팅휠(cutting wheel)을 갖춘 파이프커터 · 볼트크로퍼와 클립퍼(clipper)와 체인 커터(chain cutter)[플라이어(plier)형]

(2) 천공(穿孔)펀치(예를 들면, 단추 구멍을 뚫는 펀치) ; 표권용 펀치[일자나 그 밖의 다른 문자를 표권에 스탬핑(stamping)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9611호**] ; 마구용의 펀치(punch) · 매트리스용 펀치(punch) 등[펠트(felt) · 가죽 등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서 플라이어(plier) 형인지, 해머를 사용하는 형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솔리드 네일(solid nail)과 이와 유사한 펀치(punch)는 **제외한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공작기계용의 펀치(punch)와 줄(file)[회전식의 줄(file)을 포함한다](**제8207호**)

(b) 손톱 줄(file)과 손톱깎이(**제8214호**)

(c) 설탕집게(**제8215호**)

(d) 기계식의 금속 전단기(**제8462호**)와 테이블 · 책상 등에 펀치(punch)를 고정시키거나 세우기 위한 베이스를 갖춘 사무용의 천공(穿孔) 펀치(**제8472호**)

(e) 일자나 그 밖의 다른 문자를 표권에 압날하는데 사용하는 표권용 펀치(**제9611호**)

82.04 -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11 -- 조절할 수 없는 것

8204.12 -- 조절할 수 있는 것

8204.2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수공구를 포함한다.

- (1)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예: 고정식이나 조정식의 조오(jaw)를 갖춘 것 ; 소켓스패너(socket spanner)·박스스패너(box spanner)와 톱니바퀴식의 스패너(ratchet spanner) ; 크랭크 핸들 스패너(crank handle spanner)] ; 차량용·코치스크루용(coach screw)·급수전용이나 파이프용의 렌치(wrench)와 스패너(spanner)[체인형의 파이프 렌치(pipe wrench)를 포함한다] ; 토크미터렌치(torque meter wrench). 다만, 이 호에는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제8205호)**.
- (2)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드라이브(drive)와 익스텐션(extension)을 포함한다]

82.05 -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 -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8205.2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8205.30 -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 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205.4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 가정용 공구

8205.59 -- 기타

8205.60 - 블로램프(blow lamp)

8205.70 -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8205.90 -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공구(hand tool)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그 밖의 공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crank)·래칫(ratchet)이나 기어링(gearing)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 공구를 포함한다.

(A) **드릴링(drilling)·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tapping)용 공구** : 예: 꺾쇠(툽니바퀴형의 것을 포함한다)·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수동식드릴 ; 다이스톡(die stock)·탭렌치(tap wrench)와 스크루플레이트(screw plate). 이러한 수공구와 함께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 [예: 드릴(drill)·비트(bit)·탭(tap)과 다이(die)]는 **제외한다(제8207호 참조)**.

(B) **망치(hammer, sledge hammer)** : 대장장이·보일러 제조공·목공·편자공·채석공·석쇄공·유리공·벽돌공과 석공용의 망치, 석재파쇄용 망치·큰 망치·석재조(石材粗)파쇄("brush")망치·피크(pick)와 네일 풀러(nail puller) 등의 부속용구가 부착된 망치

(C)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 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 목공·가구공·캐비닛 제조공·통제조공·목각공 등이 사용하는 종류의 여러 가지의 대패와 라우터(router)(평평하게 하는 것·홈을 파는 것·결합하기 위한 모서리를 내는 것·건목대패 등)와 살을 내는 칼·나무 깎는 도구·조각 칼과 당겨 깎는 대패 등이 있다.

(D) **스크루드라이버(screw driver)**(툽니바퀴형의 것을 포함한다)

(E)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다리미[가스·파라핀(등유)·목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되고 **제8516호**에 열거된 전기다리미는 **제외한다**]와 헤어아이론(curling iron) ; 병마개 따는 것·코르크스크루(cork screw)·단순 캔 오프너[키(key)를 포함한다] ; 너트크래커(nut-cracker) ; 과일핵 제거기(스프링형) ; 버튼 훅(button hook) ; 구두주걱 ; 강(鋼)과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나이프 샤프너(knife sharpener) ; 페이스트리(pastry) 절단기·재거(jagger) ; 치즈 등을 가는 기구 ; 가벼운 다지개(커팅휠을 갖춘 것) ; 치즈를 얇게 자르는 기구·채소를 얇게 자르는 기구 ; 와플(waffle)을 굽는 기구 ; 크림이나 알을 휘젓는 기구·알을 얇게 자르는 기구 ; 버터 컬러 ; 얼음 깨는 기구 ; 채소 으깨는 기구 ; 라딩니들(larding needle) ; 부지쟁이·불집게·갈퀴와 스토브(stove)나 난로용의 뚜껑 올리는 기구

- (2) 보석가압용 공구·저울평형용 공구·축의 리베팅(riveting)용 공구·태엽권치구나 중심축(pivot) 회전용 공구·천칭나사 고정용 공구·조정용 공구와 같은 시계 제조자용의 공구
- (3) 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Glaziers' diamond)[눈금이 그려진 스케일에 장치된 캠퍼스식의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붙은 유리칼(원판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유리에 디자인 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붙은 획선기(scriber)를 포함한다]. 분리하여 제시된 다이아몬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102호)**.
- (4) 세트(sett)·스웨이즈(swage)·풀러(fuller)·하아디(hardy)와 편치와 같은 대장장이용 공구
- (5) 쇠지레·지렛대용 레버·할석용의 끌·편치와 썰기와 같은 광업용과 도로 공사용의 공구
- (6) 석공·주물공·시멘트공·플라스터공(plasterer)·도장공용 등의 공구 : 즉, 흙손·스무더(smoother)·서버(server)·스크레이퍼(scraper)와 스트립핑ナイ프(striping knife)·스무더용 니들(smoother's needle)과 클리너(cleaner)·톱니바퀴 모양의 롤러·커팅휠식(cutting wheel)의 유리칼·팔레트ナイ프(palette knife)와 퍼티ナイ프(putty knife)
- (7) 그 밖의 여러 가지 수공구 : 예를 들면, 편차공용의 껍질 벗기는 칼·발굽의 앞 부분을 깎는 칼·후프 피커(hoof picker)와 후프 커터(hoof cutter)·금속을 쪼는 끌과 편치 ; 리베터용의 드리프트(riveters' drift)·스냅과 편치 ; 플라이어(plier)형이 아닌 못 뽑기·케이스 오프너(case opener)와 핀 편치(pin punch) ; 타이어 레버(tyre lever) ; 구두수선공용의 송곳(실 구멍이 없는 것) ; 가구공용이나 제본사용의 편치 ; 납땀 인두와 낙인 인두 ; 메탈 스크레이퍼(metal scraper) ; 플라이어(plier)식이 아닌 톱 세트 ; 미터박스 ; 치즈 견본 채취기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땅 다지는데 사용하는 망치 ; 그라인딩 휠 드레서(grinding wheel dresser) ; **제8422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크레이트 등에 사용하는 스트래핑 기기(strapping appliance)(관련 해설 참조) ; 포장물·판지 등을 철하는 스프링식의 “피스톨(pistol)” ; 카트리지의 리베팅(riveting)용과 벽의 콘센트용 등의 공구 ; 유리부는 직공용의 관(管) ; 입으로 부는 관(管) ; 기름통과 주유관(罐)(펌프나 나선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그리스건(grease gun)

(F) **블로램프(blow lamp)**(예: 땀질용이나 납접용 ; 페인트 제거용 ; 세미디젤엔진 시동용의 것). 이 램프는 두 가지의 형태로 모두 자장식이며 광유용이나 그 밖의 액체연료용(때로는 소형의 펌프를 갖추고 있다) 저장 용기나 대체 가능한 가스 충전된 카트리지를 저장 용기를 내장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납땀용 인두나 낙인용 인두나 그 밖의 부착물이 램프의 끝에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가스에 의해 작동하는 용접기기는 **제외한다(제8468호)**.

(G)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 가구 제조공 · 목공 · 자물쇠 제조공 · 총기 제조공 · 시계 제조공 등이 사용하는 핸드 바이스(hand vice) · 핀 바이스(pin vice) · 벤치나 테이블 바이스(공작기계나 워터제트절단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형성하는 바이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그룹에는 바이스(vice)와 같이 공구를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크램프(cramp)와 벤치를 고정시키는 홀드패스트(holdfast)도 포함한다[예: 가구제조공용 클램프(clamp) · 플로어클램프(floor clamp)와 공구제조공용의 클램프(clamp)].

이 그룹에는 또한 잡는 부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非)금속(목재 · 섬유 등)으로 만든 조그립(jaw grip)으로 표면을 싼 금속으로 만든 바이스(vice)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물품을 이동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물품에 부착시키게 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기판 · 손잡이와 진공 레버나 고무 원반 등으로 구성되는 진공컵 홀더(흡착그립)는 **포함하지 않는다**(예: **제7325호 · 제7326호나 제7616호**).

(H) **모루 · 휴대용 화덕 ·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여러 가지 크기와 용도의 모루(두 개의 부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예: 대장공용 모루(smith's anvil) ; 시계제조자용과 보석제조공용의 모루 ; 구두제조공용과 구두수선공용의 구두돌(last) ; 낫의 날을 똑바르게 하는 수동식의 모루
- (2) 휴대용 화덕(보통 송풍기를 갖추고 있으나 때로는 모루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 주로 작은 공장 · 조선소 등에서 사용한다)
- (3)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수동식이나 페달식의 것으로서 목재나 그 밖의 프레임을 갖춘 것). 기계구동식의 그라인딩휠은 **제84류나 제85류**에 분류하며 단독으로 제시하는 그라인드 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6804호**에 분류한다.

금속을 함유하였지만 고무 · 가죽 · 펠트 등의 작용부분을 갖춘 공구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40류 · 42류 · 59류** 등).

앞에 언급한 제외규정과는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에 열거된 것도 **제외한다**.

- (a) 수봉침과 그 밖의 **제7319호**에 해당되는 물품
- (b) 호환성 공구[수지공구(기계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용 · 공작기계용이나 동력구동식 수지공구용의 것(예: 스크루드라이버 비트와 착암기(rock drilling)용 비트)](**제8207호**)
- (c)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이나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을 포함한다)(**제8424호**)
- (d) 수지식 공구용의 툴홀더(**제8466호**)
- (e)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 유압식의 것이나 모터(전기식이나 비전기식)를 갖춘 것](**제8467호**)
- (f) **제90류**에 해당되는 패선용(marking out) · 측정용 · 검사용과 구경측정용 기기[예: 패선용 게이지와 펀치 · 센터펀치(centre punch) · 스크라이버(scriber) · 캘리퍼(calipers)와 게이지]

82.06 -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이 호에는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최소** 둘 이상의 공구의 세트(sets of tool)가 포함되는데, **단**,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어야 한다(예: 플라스틱 케이스나 금속공구상자 속).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자동차용 기계공구 세트. 예: 소켓(socket) 세트 · 스패너(spanner) · 라켓렌치(ratchet wrench) · 스크루 드라이버(screw driver) ·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하는 것
- (2) 스패너(spanner)와 스크루 드라이버(screw driver) 세트와 같은 단순한 결합물

이 표의 다른 호나 류에서 나오는 사소한 공구를 포함한 세트도 이 호에 분류한다. **단**, 그러한 사소한 품목은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82.07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스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 태핑(tapping)용 · 드레딩(threading)용 · 드릴링(drilling)용 · 보링(bor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밀링(milling)용 · 터닝(turning)용 · 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13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2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207.2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8207.30 - 프레스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

8207.4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8207.5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8207.6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8207.70 - 밀링(milling)용 공구

8207.80 - 터닝(turning)용 공구

8207.9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이 류의 앞 호까지의 각 호에는(기계식의 톱날과 같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가 해당되었으나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A) 수공구(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예: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 받침대(brace)와 다이 스톡(die-stock)]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

(C) 제8467호의 공구

앞에 언급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 · 금속탄화물 · 목재 · 석재 · 에보나이트(ebonite) · 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에 프레스싱(pressing) · 스탬핑(stamping) · 펀칭(punching) · 태핑(tapping) · 드레딩(threading) ·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 리밍(reaming) · 브로칭(broaching) · 밀링(milling) · 기어커팅(gear-cutting) · 선반세공(turning) · 절단(cutting) · 모티싱(morticing) · 드로잉(drawing)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screwdriving)을 말한다.

이 호에는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용이나 토양시굴기(earth boring)용의 공구도 포함한다.

위에 언급한 것 이외의 기계류에 사용하는 다이(die) · 펀치(punch) · 드릴(drill)이나 그 밖의 호환성공구는 그들을 사용하는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 해당 기계류가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공구는 일체(one-piece)로 제작되거나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으로 제작되는 수도 있다.

전부가 동일한 재료만으로 일체로 제작된 공구는 일반적으로 합금강이나 고탄소강으로 되어 있다.

복합 공구는 하나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것으로 구성되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용접이나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등은 예를 들어 브리지플레이트(bridge plate)·클램핑 스크루(clamping screw)나 스프링코터핀(spring cotter pin)과 필요에 따라서는 칩브레이킹 립(chip-breaking lip) 등의 기구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블레이드·플레이트·포인트)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다.

또한 이 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용 부분[절삭치(cutting teeth)·홈(flute·groove)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용 부분을 갖추고 이러한 부분에 연마 재료를 부착한 후에도 그 기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연마 재료를 피복하거나 부착한 공구도 포함되며 이러한 공구는 연마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고 ; 다만, 대부분의 연마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804호** 해설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착암용 공구·굴착용 공구** : 광업용·유정(油井)드릴링용과 측심(sounding)용 공구를 포함한다[예: 오오거(auger)·보링비트(boring bit)와 드릴(drill)].
- (2)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s)**[인발(引拔)용 플레이트를 포함한다].
- (3)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편칭(punching)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冷間) 프레스(press)나 스탬핑(stamping)용의 편치(punch)와 다이(dies) ; 드롭(drop) 단조(鍛造)용 다이 ;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穿孔)용 다이와 절단용 다이와 편치를 포함한다.
- (4) **드레딩(threading)용 공구과 태핑(tapping)용 공구** : 탭(tap)·다이·체이서(chaser)와 체이서용 다이와 같은 것
- (5) **착암용을 제외한 드릴용(drill) 공구** : 드릴(drill)[스파이럴 드릴(spiral drill)이나 트위스트 드릴(twist drill)·센터비트(centre bit) 등]·브레이스비트(brace bit) 등을 포함한다.
- (6)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 리밍(reaming)을 포함한 것
- (7) **밀링(milling)용 공구** : 예, 밀링 커터(milling cutter)[플레인 커터(plain cutter)·헬리컬 커터(helical cutter)·스태거드 커터(staggered cutter)·앵글 커터(angle cutter) ; 기어커팅 홈(gear-cutting hob) 등
- (8) **터닝(turning)용 공구**
- (9) **그 밖의 호환성 공구**. 예를 들면 :
 - (a) 드레싱(dressing)·플레이닝(planing)·그루빙(grooving)·래핑(lapping)·트루잉용(trueing) 공구
 - (b) 목재의 모티싱(morticing)·조형·텅잉(tonguing)용의 공구[목재모티싱(morticing)의 커팅체인(cutting chain)을 포함한다]
 - (c) 페인트(paint)·글루(glue)·모르타르(mortar)·매스틱(mastic)과 코팅슬립(coating slip)과 같은 물질을 믹싱(mixing)·스터링(stirring) 등을 하기 위한 공구
 - (d) 스크루 드라이버(screwdriver) 비트

선 인발(線引拔)용 다이(dies)·선반용 공구 등은 방사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고무·가죽·펠트 등의 작용하는 부분을 갖춘 추(bob)·휠(wheel)과 그 밖의 공구는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40류·제42류·제59류 등).
- (b) 모든 종류의 톱날(제8202호)
- (c) 플레인 아이언(plane iron)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구의 부분품(제8205호)
- (d) 기구용이나 기계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제8208호)
- (e) 공구용의 판(plate)·봉(stick)·팁(tip)과 이와 유사한 물품[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209호)
- (f) 인조섬유 방사용의 방사구(紡絲口)(제8448호)
- (g) 기계와 수공구용의 가공물 지지구와 툴홀더(tool holder)와 자개식(自開式 : self-opening) 다이헤드(diehead)(제8466호)
- (h) 유리섬유 인발(引拔)용의 다이(dies)(제8475호)
- (ij)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브러시(금속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603호)

82.08 -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 금속 가공용

8208.20 - 목재 가공용

8208.3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208.40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8208.90 - 기타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계장치용의 정사각형·직사각형·원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수공구용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예: 대패의 날)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용도의 칼과 절단용 칼날을 포함한다.

(1) 금속 가공용

(a) 공작기계 등의 공구에 부착되는 칼날과 칼[예: 리머(reamer)나 밀링커터(milling cutter)에 부착되는 것]

(b) 금속의 시트(sheet)·선(線: wire)·봉(bar) 등의 절단용 전단기나 기요턴형 전단기에 사용하는 날

(2) 목재 가공용

(a) 플레이닝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재가공기구의 날과 아이언

(b) 베니어(veneer) 절단기구의 날

(3)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예를 들면, 가정·식육점·빵집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기계용의 날과 커터(cutter)[예: 민싱기(mincing machine)·채소용의 초퍼(chopper)·빵용 슬라이서·베이컨이나 햄용 슬라이서에 사용하는 블레이드]

(4)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예를 들면, 나무뿌리 커터(root cutter)·스트로 커터(straw cutter)용 등이나 잔디깎는 기계용의 날과 나이프; 수확기나 립핑(reaping)기구의 날과 날의 세그먼트(segment). 다만, 이 호에는 썬레(harrow)용의 디스크(disc)나 쟁기용의 코울터(coulter)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기계나 기계장치용**. 예를 들면:

(a) 가축의 스플리팅(splitting)·페어링(paring)이나 표면 트리밍(trimming)에 사용하는 기계의 날과 나이프(원형 모양의 것이나 컵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b) 종이·직물·플라스틱 등의 절단기구의 날과 나이프; 연초재단기(shredding machine)용 등의 날과 나이프

82.09 -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판(plate)·봉(stick)·팁(tip)·로드(rod)·펠릿(pellet)·링(ring) 등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가열할 때에도 대단히 견고하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팁 등은 금속이나 그 밖의 단단한 재료를 가공하는 선반 공구·밀링공구·드릴(drill)·다이(die)나 그 밖의 고속 절삭기의 공구에 뿔질이나 용접되거나 고정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것은 선단(先端)을 예리하게 한 것인지나 다른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공구에 부착된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공구에 부착된 것은 **공구가 해당하는 호(특히 제8207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혼합되지도 않고 소결(燒結)되지도 않은 금속 탄화물(제2849호)
- (b)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소결(燒結)되지 않은 금속 탄화물(제3824호)
- (c) 공구용 세라믹 판(plate)·봉(stick)·팁(tip)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6909호)
- (d) 모래분사(sand blast)용 노즐과 그 밖의 기계용의 내마찰성 부분품으로서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제84류)

82.10 -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조작되고 한 개의 중량이 10kg 이하의 것으로서 음식물의 조리나 제공에 사용하는 **전기식이 아닌**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크랭크핸들(crank-handle)·기어링(gearing)·아르키메디안 스크루액션(Archimedean screw-action)·펌프 등과 같은 기구를 갖는 것이면 기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간단한 레버(lever)나 플런저(plunger) 액션을 갖춘 것에 있어서는 벽이나 그 밖의 표면에 고정하도록 제작되지 않았거나 테이블·상 등에 세워놓기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한 이 호에 분류하는 기구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호의 물품은 제8205호나 제84류에 해당되는 기구에 속하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이 호에 해당된다.

- (1) 중량이 10kg 이하일 것
- (2) 앞에서 설명한 기계적 특징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것들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의 예이다.

커피와 향신료 분쇄기 ; 채소용 민서(mincer)와 매셔(masher) ; 식육용의 민서와 슬라이서 ; 식육 압착기 ; 치즈용 그레이터(grater) 등 ; 채소와 과실용 슬라이서·커터와 필러[포테이토 칩퍼(chipper)를 포함한다] ; 빵용 슬라이서 ; 마카로니와 스파게티 커터 ; 과일의 씨 바르기용 기구 (단지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스프링형의 것을 **제외한다**) ; 병오프너와 코르크(corker) ; 캔오프너 (**제8205호**의 단순 캔오프너는 **제외한다**) ; 캔 시일러(sealer) ; 버터교반기 ; 아이스크림 프리저 (freezer)와 포션 서버(portion server) ; 알·크림이나 마요네즈용 비터(beater)와 믹서 ; 과즙과 육즙 추출기 ; 얼음 분쇄기

82.11 -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지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 기타

8211.91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211.92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211.93 --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211.94 -- 칼날

8211.95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제8208호**에 해당되는 것과 흔히 칼로 부르는 공구와 식탁용구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는 것 [예: **제8201호**의 건초 베는 칼(hay knife)과 그 밖의 이 호 해설의 끝부분에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된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러 가지의 접어지지 않는 식탁용 칼**(고기 썰는 칼과 디저트용의 칼을 포함한다) : 이러한 칼은 자루와 칼날이 일체의 금속으로 되었거나 비금속(卑金屬)·목재·뿔·플라스틱 등의 자루가 부착된 것도 있다.

(2) **주방용·직업용이나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는 접어지지 않는 칼** : 일반적으로 앞에 설명한 정보보다 외관상 장식의 적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식육점용의 칼 ; 제본사나 제지업자용의 칼 ; 제혁업자·모피상·마구공과 구두수선공용의 칼(자루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양봉가용 칼 ; 정원사용의 전지용 칼 등 ; 수렵용의 칼과 칼집이 있는 칼 ; 굴까는 칼 ; 과실의 껍질 벗기는 칼

(3) 비금속(卑金屬)·목재·뿔·플라스틱 등의 자루를 부착한 여러 가지의 **접는 칼** :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포켓용 칼·펜 나이프·책 나이프·캠퍼(campers)용 나이프와 스포츠 나이프[이러한 칼들은 한 개보다 많은 날을 가지고 있거나 보조적인 코르크스크루(corkscrews)·스파이크·스크루 드라이버(screwdriver)·가위·캔 오프너 등을 갖추고 있다] ; 접는 식의 포켓형의 전지·접지 등에 사용하는 칼

(4) **여러 개의 호환성 날을 가진 칼** : 날이 손잡이에 포함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에 해당되는 나이프 제조용의 날도 분류한다. 여기에는 가공하지 않았거나 기계 가공된 블랭크(blank)와 연마나 완성 가공된 날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칼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도 포함한다.

위의 첫번째 단락에서 열거된 예외사항 이외에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낫(bill hook)과 마세테(matchet)(**제8201호**)
- (b) **제8214호**의 칼붙이 물품
- (c) 생선용 칼과 버터 자르는 칼(**제8215호**)



[소호해설]

소호 제8211.10호

소호 제8211.10호의 범위는 종류가 다른 칼의 세트나 조합된 세트의 것으로 한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칼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수량 면에서 제일 우세하다.

82.12 -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 - 면도기

8212.2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90 - 그 밖의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날 접이식 면도기(open blade razor)** : 분리하여 제시되는 **칼날(blade)**(완성품인지에 상관없다)과 분리하여 제시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루**를 포함한다.

(2) **안전면도기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그 부분품과 칼날**(완성품인지에 상관없다)

(3) 날(blade)과 함께 제시된 **플라스틱 안전면도기**

이 호에는 **전기식이 아닌 건식(dry) 면도기**와 날·전기식이 아닌 면도기의 날과 커팅 플레이트(cutting plate)와 헤드를 포함한다.

안전면도날의 블랭크(blank)는 안전면도날의 제조용으로 이미 구멍이 뚫어졌거나 약간의 압력에 의하여 분리될 수 있도록 날의 윤곽이 새겨진 것이면 철강으로 만든 스트립(strip) 모양 [소둔(燒鈍)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면도날 없이 제시된 플라스틱 안전 면도기(**제3924호**)

(b) 전기식 면도기와 전기식 면도기의 머리부분과 날과 절삭판(cutting plate)(**제8510호**)

82.13 -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이 호에 분류하는 가위는 중심점 근처에서 핀(pin)이나 스크루(screw)로 연결시킨 겹쳐진 두 개의 날이나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날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날(刃)의 손잡이의 끝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갈 구멍이 있는 가위^단을 포함한다. 날은 일체로 되어 있는 것과 절단용의 날과 손잡이가 접합하여 구성되는 것이 있다.

이 호에는 손잡이의 한 쪽 끝은 경첩(hinge)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손가락 구멍만 있는 형의 가위도 포함한다(주로 직물공업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가정용·사무용이나 재봉용의 **보통 가위**(직선 모양이나 곡선 모양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직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위**[예: 양복 재단사와 드레스 메이커의 가위(scissors and shear)](단추 구멍용의 가위를 포함한다); 이발사용의 가위(thinning scissors를 포함한다); 포목상용·가죽공용·장갑 제조공용이나 모자 제조공용의 가위
- (3) **메니큐어용의 가위**(날이 있는 면이 손톱 다듬는 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4) **소형의 접는 가위**(예: 포켓용 가위와 자수용 가위; 화초용 가위; 포도 재배용 가위; 연초 절단용 가위)
- (5) **특수형의 가위**[예: 핑킹가위; 트윈가위[날(blade)이 네 개 있으며 직물류의 스트립(strip)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것]; 호스 클리핑(horse clipping) 가위; 발굽절단용 가위; 전지가위형의 가위[한쪽 날(blade)은 볼록(凸)형이고 다른 쪽 날(blade)은 오목(凹)형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 구멍을 갖춘 가위의 특성이 있는 것(예: 절화용 가위)]

이 호에는 **가위의 날(blade)**도 포함한다(완성품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분류하지 않는다**.

- (a) 울타리 절단기(切斷機)·양털깎는 기기 등으로서 날은 있으나 손가락 구멍이 **없는 것**과 **제8201호**의 전지가위(secateur)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류 용 가위를 포함한다]
- (b) 동물의 발굽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특수한 편자공(farrier)용 두 손 가위(**제8205호**)

82.14 -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8214.2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포켓용을 포함한다)와 그 날(blade) :** 단, 제8472호의 연필 깎는 기계는 제외한다.

(2)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용의 세트와 용구[손톱줄(접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 이러한 용구에는 또한 손톱 클리너·티눈 자르는 것·티눈 추출구·표피절제용 나이프·표피 프레스서(presser)와 푸셔(pushers)·손톱 깎는 기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보통 상자·케이스 등에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용 기구를 넣어서 세트로 한 것이 포함되며, 가위·비(非)금속(non-metallic)으로 만든 손톱 광택기·모발용구 등이 들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3) **전기식이 아닌 수동식 이발기**

전동기를 갖춘 전기식 이발기는 제8510호에 분류하고 ; 보통 스탠드에 설치되며 플렉시블(flexible)한 트랜스미션(transmission)을 갖추고 있는 동물용의 기계식 이발기는 제843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이발기의 예비 부분품 뿐만 아니라 제8436호의 기계식 이발기용 절삭판(cutting plate)과 머리부분(head)도 포함한다.

(4) **정육점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토막용 칼(chopper)과 칼붙이(cleaver)와 다지기(mincing)용 칼 :** 이러한 제품은 보통의 칼 모양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 손이나 두 손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82.15 -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skimmer) · 케이크서버(cake-server)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8215.2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 기타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215.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여러 가지의 스푼(소금과 겨자용의 스푼을 포함한다)
- (2) 테이블용 포크 ; 카빙(carving)용 포크 · 서빙용 포크 · 조리용 포크 ; 케이크용 포크 ; 굴(oyster)용 포크 ; 달팽이용 포크 ; 토스팅(toasting) 포크
- (3) 국자와 국자형의 스키머(skimmer)(채소용 · 튀김용 등)
- (4) 생선 · 케이크 · 딸기 · 아스파라거스의 서비스용 주걱
- (5) 날이 없는 피시나이프와 버터나이프
- (6) 여러 가지의 설탕집게[날(blade)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케이크용 · 오르되브르(hors-d'oeuvre)용 아스파라거스용 · 달팽이용과 식육이나 얼음용의 집게
- (7) 가금류나 식육용의 그립(grip)과 가재용의 그립과 유닛 그립(unit grip)과 같은 그 밖의 식탁용품

이러한 물품은 일체로 되어 있거나 비금속(卑金屬) · 나무 ·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자루가 부착되어 있다.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 이 호에는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이 호의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구성된 세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가재 커터(lobster cutter)나 진지형(secateur type) · 가위형(scissors type)의 가금(家禽)류 용 가위(shear)는 **제외한다(제8201호나 제8213호)**.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주:

1.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제7320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e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총설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물품에 있어서는 해당 금속의 성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이 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卑金屬)의 성분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속(卑金屬)의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그러나 이 류에서는 스프링(spring)(자물쇠 등의 용으로 특별 제작된 것일지라도)·체인(chain)·케이블(cable)·너트(nut)·볼트(bolt)·스크루(screw)나 못을 **제외하며** ; 이러한 물품은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15부의 주 제2호와 제83류의 주 제1호 참조).

83.01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 - 자물쇠

8301.20 - 자동차용 자물쇠

8301.30 - 가구용 자물쇠

8301.40 - 그 밖의 자물쇠

8301.5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301.60 - 부분품

8301.7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예: 실린더식(cylinder)·레버(lever)식·텀블러(tumbler)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복합식 자물쇠)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예: 아파트 건물의 도로에 접한 도어용의 것이나 승강기 도어용의 것).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마그네틱(magnetic) 카드의 삽입·전자식 키보드 위에 복합 데이터의 입력이나 전파 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여러 가지의 자물쇠(padlock) : 문·트렁크(trunk)·함(chest)·백(bag)·자전거 등에 사용하는 것(열쇠로 조작되는 자물쇠식의 문고리를 포함한다)

(B) 문과 대문·편지함·금고·상자와 손상자·가구·피아노·트렁크(trunk)·슈트케이스·핸드백(hand bag)·디스패치 케이스(dispatch-case) 등과, 자동차·철도차량·전차 등에 사용하는 자물쇠와 승강기·셔터(shutter)·슬라이딩 도어(sliding door) 등에 사용하는 자물쇠

(C)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이스·볼트·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와 소켓(socket)·열쇠 좌판(座板 : thread escutcheon)·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자물쇠 돌기·실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

(2)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거칠게 주조된 블랭크(blank)·단조(鍛造)된 블랭크(blank)나 타발된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철도 객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열쇠와 걸쇠(skeleton key) 등도 포함한다.

다만, 이 호에는 단순한 빗장이나 볼트(bolt)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제8302호), 또한 핸드백·서류가방·소형가방용 등의 파스너와 걸쇠(열쇠나 숫자 문자 조합식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닌 것)도 제외한다(제8308호).



[소호해설]

소호 제8301.30호

이 소호에는 가정용 가구의 자물쇠뿐만 아니라 사무실용 가구의 자물쇠도 포함한다.

83.02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 경첩

8302.20 - 카스터(castor)

8302.3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8302.42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302.49 -- 기타

8302.5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302.60 - 자동도어 폐지기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다만, 창틀·회전의자 등의 회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여러 가지의 **경첩(hinge)**[예: 버트경첩(butt hinge)·리프트 오프 경첩(lift-off hinge)·앵글 경첩(angle hinge)·스트랩 경첩(strap hinge)와 가닛(garnet)]

(B) 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카스터(castor)**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카스터(castor)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뀌는 어떠한 재료일 수도 있다(귀금속은 **제외한다**).

공기를 넣은 타이어(tyre)를 가진 카스터(castor)의 경우, 카스터의 직경은 보통의 기압을 넣은 타이어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 살(spoke)의 존재는 카스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호의 용어나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카스터는 **제외한다**(예: 제87류).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bracket)·파스닝(fastening) 부착구·스프링(spring)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체인(chain)·봉(bar) 등이 부착된 도어가드(door guard) ; 에스파냐나(espagnolette)나 여닫이창용(casement)의 볼트(bolt)와 부착구 ; 여닫이창용의 파스너(fastener)와 지주 ; 통풍창이나 채광창용의 개폐구·지주와 부착구 ; 캐빈(cabin)용의 훅(hook)과 아이(eye) ; 이중창용의 훅(hook)과 부착구 ; 셔터(shutter)와 블라인드용의 훅(hook)·파스너(fastener)·스톱(stop)·브래킷(bracket)과 롤러 엔드(roller end) ; 우편함용 판(plate) ; 도어 노커(door knocker)·스파이홀(spy hole) 등(광학소자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2) 문에 사용하는 문고리[볼스프링식(ball spring)의 것을 포함한다]·볼트·파스너(fastener)·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

(3) 슬라이딩 도어(sliding door)나 상점·격납고·차고 등의 창에 사용하는 부착구[예: 그루브(groove)와 트랙(track)과 러너(runner)와 롤러(roller)]

(4) 빌딩의 문에 사용하는 키홀 플레이트(keyhole plate)와 핑거 플레이트(finger-plate)

(5) 커튼(curtain)·블라인드(blind)·휘장의 부착구[예: 봉(rod)·관(管 : tube)·장미꽃 모양의 장식·대·밴드·술이 달린 훅(hook)·클립(clip)·슬라이딩 링(sliding ring)과 러너 링(runner ring)과 스톱(stop)] ; 썬기 모양의 훅(hook)·가이드(guide)와 노트홀더(note-holder) [블라인드 코드(blind cord) 등의 것] ; 계단용의 부착구(예: 계단의 디딤널판용 보호구) ; 계단 카펫클립(carpet clip)·계단용의 봉·난간용 놉(knob) 등

커튼(curtain)이나 계단용의 봉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봉·관(管)과 장대 등으로서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구멍을 뚫은 것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6) 문·창·셔터용 코너 브레이스(corner brace)·보강용 플레이트(plate)·앵글(angle) 등

(7) 문에 사용하는 고리와 꺾쇠 ; 문에 사용하는 손잡이와 놉(자물쇠나 빗장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8) 도어 스톱(door stop)과 도어 클로저(door closer)[아래 (H)의 것은 **제외한다**]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구의 다리 등의 보호용 스테드(stud)(한 개 이상의 포인트가 있는 것) ; 금속으로 만든 장식구 ; 책 케이스용의 조절구 ; 찬장과 침대용의 부착구 ; 키홀 플레이트(keyhole plate)

(2) 코너 브레이스(corner brace)·보강용 플레이트(plate)·앵글(angle) 등

- (3) 문고리(볼 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 · 볼트(bolt) · 파스너(fastner) · 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
 - (4) 함(chest) 등에 사용하는 고리와 꺾쇠
 - (5) 손잡이와 knob(자물쇠와 빗장용의 것을 포함한다)
- (F) (1) 트렁크 · 함(chest) · 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구용의 부착구와 유사물품. 예: 리드 가이드(lid guide)(다만, 파스너를 제외한다) ; 핸들 ; 가장자리 보호구 ; 리드(lid)용의 지주와 러너(runner) ; 바구니식 트렁크용의 닫기용 로드 ; 익스팬딩 케이스용(expanding case)의 부착구 ; 다만, 핸드백용 장식품은 제7117호에 분류한다.
- (2) 함(chest) · 트렁크 · 통 · 상자 · 슈트케이스 등에 사용하는 코너 브레이스(corner brace) · 리인포싱 플레이트(reinforcing plate) · 앵글 등
 - (3) 마구용의 부착구와 유사 물품 : 재갈 · 고삐 · 안장 앞고리 · 등자 ; 붓줄 · 마구와 고삐고리 ; 호스브라스(horse-brasse)와 그 밖의 마구용의 부착구 등
 - (4) 통(casket)이나 관(coffin)에 사용하는 부착구와 유사물품
 - (5) 선박용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G) **모자걸이 · 모자 거는 못 · 브래킷(bracket)**(고정식 · 경첩식이나 치아 모양으로 된 것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 · 타월걸이 · 행주걸이 · 술걸이 · 열쇠걸이)
가구의 성격을 가진 코트걸이 등(예: 선반을 부착한 코트걸이)은 제94류에 분류한다.
- (H) **자동도어폐지기**(문 · 대문 등에 사용하는 스프링이나 유압식의 것)

83.03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이 호에는 귀중품·보석류·서류 등을 도난이나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된 용기와 금고실 문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금고(safe and strong-box)는 철강으로 만든 용기이고 그 벽이 **장갑되어 있는 것**(즉, 고강도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이나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된 철강의 판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은행·사무실·호텔 등에서 사용하고 매우 안전도가 높은 자물쇠와 밀폐된 문과 이중벽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중벽 사이에는 보통 내열 물질이 충전되어 있다. 이 호에는 보다 넓은 저장 공간이 요구되는 은행·보관소·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보강된 금고실 문과 금고(문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현금과 증서용의 금속으로 만든 상자(내부 칸막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휴대식의 상자(열쇠 작동식이나 숫자 문자 조합식 자물쇠가 결합된 것)로서 때로는 이중벽의 것도 있으나 그 디자인·구성 재료 등에 의하여 도난과 화재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집용 상자·금전용 상자 등에 있어서도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며 ;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구성성분인 금속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완구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주거용(dwelling) 안전문(**제7308호**)
- (b) 불·충격·파쇄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것으로서, 특히 그 벽을 뚫거나 절단하여 부서서 열려고 할 경우 이에 잘 견디지 못하는 용기(container)(**제9403호**)

83.04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서신 · 인덱스카드나 그 밖의 문서를 분류 · 정리나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분류함과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마루에 세우도록 설계된 것과 제94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제9403호)(해설서 제94류 총설 참조)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문서 분류용의 페이퍼트레이(paper tray) · 타이피스트(typist)용의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데스크 랙(desk rack)과 선반과 책상용품[책꽂이 · 문진(paperweight) · 잉크스탠드와 잉크병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흡취지대]도 포함한다.

단, 이 호에는 구성되는 금속에 따라 분류하는 휴지통은 **포함되지 않는다**(예: 제7326호).

83.05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 서신용 클립 · 레터코너(letter corner) · 서류용 클립 · 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예: 사무실용 · 가구류용 · 포장용의 것)

8305.1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8305.2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binder)용이나 서류철 박스용으로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클립 · 코드 · 스프링레버(spring lever) · 링 · 스크루 등과 같은 피팅(fittings)을 포함되며 ; 또한, 장부나 잡기장용의 보호용 링 · 밴드와 코너 ; 함께 묶거나 인덱스 마킹페이퍼(index-marking paper)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만든 사무용품[예: 서신용 클립(letter clip) · 서류용 클립(paper clip) · 페이퍼 파스너(paper fastener) · 레터코너(letter corner) · 카드 인덱싱 태그(card indexing tag) · 파일 태그(file tag) · 스파이크 파일(spike file)] ; 사무실용 · 가구류용 · 포장용 지철기(stapling machine)에 사용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의 스테이플(staple)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도용 핀(예: **제7317호**나 **제7415호**)

(b) 서적용 · 장부용 등에 사용하는 파스너(fastener)와 걸쇠(**제8301호**나 **제8308호**)

83.06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306.29 -- 기타

8306.30 -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A)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이 그룹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비전기식** 벨(bell)과 징(gong)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각 용도별 벨을 포함한다: 종교적인 숭배를 위한 장소·학교·공공건물·공장·선박·소방차 등의 벨; 도어 벨; 탁상용 벨; 핸드벨; 가축과 그 밖의 동물용 벨; 자전거·스쿠터·유모차용 벨; 낚시 도구용 벨(표면 꺾쇠, 클립이나 그 밖의 끼워 박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 도어 차임(door chime)·탁상용 징 등; 관광기념품용의 장식용 벨

또한 이 호에는 추(clapper)·손잡이와 돔(공히 전기식 벨이나 다른 형태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과 같은 금속으로 만든 부분품과 비전기식의 탁상용과 도어벨용의 금속으로 만든 버튼(button)과 턴키(turn-key)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을 **제외한다**.

(a) 교회 벨 등의 지지용 철강 구조물(**제7308호**)

(b) 기계식 도어 벨용의 중치는 줄·레버링(levering)과 부착구(예: **제7325호**·**제7326호**)

(c) **제8531호**의 전기식 벨과 그 밖의 신호기기

(d) 시계의 차임과 징(**제9114호**)

(e) **제9206호**나 **제9207호**의 악기의 특성을 가진 카리용(編鐘: carillon)과 징(gong)

(f) 벨을 부착한 물품: 예를 들면, 개목걸이(**제4201호**), 특정의 악기(예: 탬버린)(**제92류**), 장난감(**제9503호**), 표면 꺾쇠·클립이나 그 밖의 장치들을 끼워 박은 낚싯대용 벨(**제9507호**)

(B)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이 호에는 **본래** 가정·사무실·집회소·종교적인 숭배를 위한 장소·정원에서 **장식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것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광범위한 장식품[보조적인 비(非)금속(non-metallic)으로 만든 부분품이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다만, 그 물품의 성질과 완성가공 정도로 보아 장식품으로서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실용가치는 없으나 전적으로 장식성이 있는 물품과 다른 장식품을 수용하거나 지지하거나 다른 장식품의 효과를 더하게 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반신상·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실내장식용의 상 ; 벽로선반·선반(동물상·상징적이거나 우화적인 상 등)에 사용하는 장식품(시계의 세트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 스포츠나 예술에 대하여 수여하는 트로피(컵 등) ; 매어달 수 있도록 부착구가 결합된 벽용 장식품 [장식판·트레이(tray)·플레이트(plate)·큰 메달로서 신변장식용이 **아닌 것**] ; 조화(造花)·장미꽃 장식과 이와 유사한 장식품[단조(鍛造)나 주조된 것으로 보통 선철(銑鐵)로 만든 것] ; 가정용의 진열 캐비닛이나 선반 등에 사용하는 작은 장식품
- (2) 성골함(reliquary)·성배(chalice)·성합(ciborium)·성체현시대(monstrance)·십자고상(crucifix)과 같은 종교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 (3) 테이블용 사발·항아리·화병·화대[칠보(cloisonné enamel)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
* *

아래에 설명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물품이 실용적인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면 이 호에 포함한다.

- (A) 가정용품이 해당되는 호(예: 제7323호·제7418호와 제7616호)나 그 밖의 제품이 해당되는 호(예: 특히 니켈과 주석으로 제조된 물품의 경우)에 분류될 수 있는 가정용품. 이러한 가정용품은 보통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하도록 본래부터 설계되며 다른 장식은 보통 그 물품의 실용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이차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식된 물품이 장식되지 않은 동종 물품과 같은 정도 이상의 실용성을 갖는다면 해당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가정용품으로 분류한다. 이와 반대로 해당 물품의 실용성이 장식품의 장식적인 특성에 분명히 종속되는 것 일 때는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심한 돋을(embossed) 무늬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용성이 상실된 쟁반 ; 장식된 접시나 재떨이로 사용가능한 용기나 트레이(tray)를 부수적으로 부착시킨 장식품 ; 순수한 사용가치를 갖지 않는 축소모형(주방용구의 축소모형)이다.
- (B) 가정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금속 제품이 해당되는 각 류의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되는 물품(예: 흡연세트·보석상자·담배상자·향대·향단지·성냥그릇) : 이러한 물품은 명백히 장식의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C)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이 호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거울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뒷면을 지지하였거나 뒷면을 보강한 것이라도 이 호에는 평면상의 유리가 부착된 틀이 포함되나 금속으로 만든 틀을 갖춘 거울은 제외한다(제7009호).

또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에 들어 있는 인쇄된 그림과 사진도 해당 물품의 전체적인 본질적인 특성이 틀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역시 이 호에 분류하며 ;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틀이 있는 회화·대생·파스텔·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틀을 갖추고 있는 물품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틀을 별도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97류의 주 제5호와 제9701호와 제9702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이 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거울도 포함한다(광학소자는 제외한다. 제9001호와 제9002호의 해설 참조). 예: 일반적으로 철강이나 크로뮴(chromium)·니켈(nickel)이나 은을 피복한 철강과 황동으로 만든 벽용·포켓용이나 뒤를 보는 거울로 사용하는 것. 이러한 거울에는 틀이 부착된 것, 지지물로 뒷받침되거나 지지물이 부착된 것이 있으며, 가죽·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끈이나 케이스에 담아서 완전하게 제시하는 것도 있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가공한 철(wrought iron)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된 격벽과 난간(예: 제7308호)
- (b) 나이프(knife)·스푼·포크 등(제82류)
- (c) 자물쇠와 그 부분품(제8301호)
- (d) 가구·문·계단과 창에 사용하는 장착구와 부착구(제8302호)
- (e)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구[예: 기압계와 온도계(본질적으로 장식적으로 제시된 것을 포함한다)]
- (f) 클록(clock)과 그 케이스[작은 조각상이나 이와 유사하게 제작되었거나 장식된 것이라 할지라도 클록(clock) 케이스로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명백한 것](제91류)
- (g) 제94류의 물품
- (h) 완구와 게임용구(제95류)
- (ij) 탁상용 라이터(제9613호)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분무기(제9616호)
- (k)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83.07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 철강으로 만든 것

8307.9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의 주요한 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형이 있다.

- (1)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모양을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끝이 묶여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형태의 것은 고무·석면·방직용 섬유 등을 피복시킴으로써 내수성(耐水性)과 내가스(gas tight)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선이나 플렉시블(flexible) 전동시스템의 방수용 보호물; 진공소제기용 튜브; 압축공기·증기·가스·물·석유·기름이나 그 밖의 액체를 엔진·공작기계·펌프·변압기·액압장치와 압축공기식 기계·용광로 등에 주입하는 도관으로 사용한다. 방수성이 없는 이와 유사한 튜브는 모래·알갱이·먼지·깎아낸 부스러기(shaving) 등의 도관으로 사용하며 또한 전선 그 밖의 플렉시블(flexible) 전동파이프(transmission piping)·고무관 등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
- (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이러한 관(管 : tubing)은 자연적으로 방수성(防水性)과 기밀성(氣密性)이 있기 때문에 앞(1)항에서 설명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내압(耐壓)을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형태의 것이 하나 이상의 편조된 선이나 금속의 스트립(strip)으로 보강되거나 깎출 수 있다. 이러한 슬리브(sleeve)는 때로는 나선 모양으로 감긴 선에 의하여 보호되며 또한 플라스틱·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선을 밀착시켜서 나선 모양으로 감아 제조한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예: "보우덴(Bowden)" 전선이나 자전거용 브레이크 전선용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튜브(tube)나 파이프(pipe)로 사용하지 않는 이와 유사한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커튼용의 선)(일반적으로 **제7326호**).

열이나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thermostatic bellow나 expansion joint로 알려져 있다)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소켓(socket)·조인트(joint) 등이 부착된 튜브(tube)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외부에 금속보강재를 결합하거나 부착한 고무튜브(rubber tubing)(**제4009호**)
- (b) 기계나 차량의 부분품 등의 모양으로 제작된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예: 다른 재료가 함께 조립된 것(**제16부와 제17부**)

83.08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10 - 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

8308.2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308.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의류·신발·차양·천막이나 돛(sail)에 사용하는 **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
- (B) 모든 종류의 **관(管) 리벳(tubular rivet)과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 의류·신발·차양·천막·여행구·가죽제품·벨트 등에 사용하며 ; 또한 기계조립에도 사용한다(예: 항공기제작). 또한 이 호에는 **브레이크 맨드릴 블라인드 리벳(break mandrel blind rivet)**이 포함되는데, 고정작업 중에 맨드릴(mandrel)이 후퇴하거나 리벳(rivet)몸체에 부딪치며, 심봉자루와 업셋 엔드(upset end)의 접합부이거나 그 근처에서 부서진다.
- (C) **걸쇠·파스너·걸쇠가 붙은 프레임** : 핸드백·돈지갑·서류케이스·손가방 그 밖의 여행구·서적이거나 손목시계에 사용하는 것 ; 다만, 자물쇠(locking clasp를 포함한다)이나 걸쇠를 붙인 프레임. 자물쇠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301호)**.
- (D) 의류·벨트·벨빵·장갑·신발·각반·손목시계·잡낭·여행구와 가죽제품에 사용하는 **버클(buckle)**(침의 유무에 상관없다)과 **버클걸쇠(buckle clasp)**(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E) 특히 모조 신변장식용품의 제조나 방직용 섬유·자수천·의류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구리·구리합금이나 알루미늄(aluminium)(때로는 금장이나 은장된 것)으로 만들어지며 접착(glueing)·봉합 등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설계하였다. 구슬은 일반적으로 구(球)형이나 관(管) 모양이나 때로는 각면의 것도 있으며 ; 스팅글(spangle)은 일반적으로 원형·육각형 등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금속막으로부터 잘라낸 것으로서 보통 구멍이 뚫려있다.

위의 (A), (C)와 (D)에 언급된 물품들은 가죽·직물·플라스틱·나무·뿔·뼈·에보나이트(ebonite)·진주 모패(母貝)·상아(ivory)·모조 귀석 등의 부분이 있는것을 포함한다. **단**, 그들은 비금속(base metal)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금속의 가공에 의해 장식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모자·핸드백·신발·벨트 등에 사용하는 장식품(버클은 **제외한다(제7117호)**)
- (b) 금속의 플레이크(특히,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
- (c) 리벳(rivet)[관(管)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은 제외한다] ; 스냅훅(snap hook)(보통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
- (d) 프레스 스타드(press-stud)와 푸쉬버튼(push-button)(**제9606호**)
- (e) 슬라이드 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제9607호**)

83.09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stopper) · 캡 · 뚜껑[병마개 · 스크루캡(screw cap) ·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 · 병용 캡슐 · 나선형 마개 · 마개(bung)용 커버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8309.90 - 기타

이 호에는 드럼 · 통 · 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합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플라스틱 · 고무 · 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washer)나 그 밖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금속으로 만든 전(栓 : stopper) · 캡 · 뚜껑 : 예를 들면,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 병마개) · 크라운 캡이나 크라운 실(seal) ; 맥주병 · 탄산수병 · 저장용 항아리 · 관(管) 모양의 용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코킹(corking)이나 캡핑(capping)용으로 사용하는 나선형식 · 클립(clip)형식 · 레버(lever)형식 · 스프링(spring)형식 등의 전(栓 : stopper) · 캡 · 커버
다만, 주로 플라스틱 · 도자기 등으로 구성된 스프링(spring)식의 레버 스톱퍼(lever stoppe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 (2) 금속으로 만든 드럼의 마개(bung)
- (3) 리큐르(liqueur) · 기름 · 의약품 등의 병에 사용하는 주입구 · 점적구(點滴口 : dropping) 유출방지제로 사용하는 전(栓 : stopper)
- (4) 밀크병용의 인열식 캡슐 등, 납이나 주석의 박(箔)으로 제조된 캡슐(삼페인 · 와인 병 등에 사용하는 형의 것)
- (5) 마개(bung)용의 커버[금속판을 디스크(disc) 등의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서 마개 위에 부착하여 마개를 보호하는 것]
- (6) 삼페인병 등의 코르크(cork)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로 된 특수한 부착구
-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 · 포장물 · 건물 · 철도차량 · 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
- (8) 케이스 코너(case corner) 보호구
- (9) 봉인 가방 · 향주머니나 이와 유사한 용기용의 죄는 기구로서 플라스틱이나 종이 두 조각 사이에 삽입된 하나나 두 개의 강선(steel wire)으로 구성
- (10) 음료이나 식품캔용 등으로 사용하는 따개 모양이 새겨져 있고 고리가 달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뚜껑

83.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9405호에 분류하는 **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name plate)과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사인판·명판·광고판·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숫자나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바나시·인쇄·조각·천공·타압·주조·부각·성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광고용판·기계의 명판)이나 반복 사용(예: 예치소 등에서 사용하는 표와 꼬리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판(plate)은 해당 판에 이미 기재된 사항에 보조적인 사항을 부차적으로 추가하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예: 기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표지한 판 위에 개별적인 일련번호를 삽입하는 경우). 다만, 이 호에는 주요한 사항을 사후에 손으로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수적인 사항만 표시되어 있는 판(plate)·레이블(label)·꼬리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지역·도로 등에 사용하는 명판 ; 건물·묘지 등에 사용하는 번호판과 명판 ; 공공서비스 기관에 사용하는 사인판(sign-plate)(경찰·소방서 등)·금지판(금연·수렴 등) ; 도로와 교통용 표지판 등
- (2) 여인숙·상점·공장 등의 심벌
- (3) 광고용 사인판(sign-plate)
- (4) 가옥·문·우편함·차량·개목걸이 등의 주소판 ; 원예용 레이블(label) ; 자물쇠용 열쇠에 붙이는 꼬리표·예치소에서 사용하는 토큰(token)과 꼬리표
- (5) 기계용·계기용·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의 판(plate)과 상징물

이 호에는 분리된 문자·숫자·디자인(이들의 세트도 포함한다)(상점의 쇼윈도용과 열차를 지시하는 사인판 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사인판(sign-plate)의 제작에 사용한다)도 포함한다.

다만, 등사판(stencil plate)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 (a) 문자·숫자·디자인이 없는 판(plate)이나 특히 부수적인 사항만 있고 본질적인 정보는 사후에 추가하도록 된 판(plate)(예: **제7325호·제7326호·제7616호·제7907호**)
- (b) 인쇄용 활자(**제8442호**) ; 타이프라이터(typewriter)용 활자와 성명·주소 자동인쇄기용 판(plate)(**제8473호**)
- (c) 제8608호의 신호용의 판(plate)·디스크(disc)와 완목(腕木)신호기(semaphore)

83.11 -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땀·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83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8311.3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땀·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311.90 - 기타

이 호에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wire)·봉(rod)·관(管)·판(plate)·용접봉(electrode)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땀·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으나 심(芯)에 충전한 것에 있어서는 그 외측부분은 보통 관(管) 모양이나 때로는 스트립(strip)을 나선 모양으로 감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럭스(flux)를 피복하지 않았거나 심(芯)에 충전하지 않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봉·관(管)·판·용접봉 등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피복용이나 심(芯)에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플럭스(flux)[예: 염화아연·염화암모늄·붕사·석영·수지나 라놀린(lanolin) 등으로 제조]이며 플럭스(flux)를 피복이나 심(芯)에 충전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용접·납접이나 용착할 때 별도로 첨가한다. 전극 등도 가루 상태의 첨가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수가 있으며 전기용접의 경우에는 용접 부분에 전기아크를 인도하는 내열재료(석면 등)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

전기 아크용접(electric arc-welding)용으로는 피복된 전극이나 심선(芯線 : cored wire)을 사용한다. 피복된 전극은 철심과 여러 종류의 두께와 성분으로 되어 있는 비(非)금속(non-metal) 물질의 피복으로 구성되며, 심선은 전극의 피복용으로 사용하는 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채워진 속이 빈 물품이다. 이 선은 코일 상태이거나 실패에 감긴 상태로 제시한다.

금속 납접용으로 만든 판(plate)은 접합하는 부분의 사이에 삽입된다(보통 철강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금속의 스트립(strip)·와이어 크로스(wire cloth)나 플럭스(flux)를 피복한 그릴(grill)로 구성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절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부형제(助劑 : excipient)로 응결한 비금속(卑金屬) 가루(보통의 경우 니켈)를 압출하여 제조한 선과 봉이 포함되며 여러 가지의 재료(예: 금속과 시멘트)에 금속을 분무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플럭스(flux) 재료를 제외하고** 귀금속의 중량이 2% 이상인 합금으로 구성된 땀접(solder)을 심(芯)에 충전한 선과 봉을 **포함하지 않는다(제71류)**.

제 16 부

기계류 ·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 음성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전동(transmission)용 ·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 나.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가죽제품 ·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4205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 다. 보빈(bobbin) · 스푼(spool) · 콕(cop) · 콘(cone) · 코어(core) · 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 [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39류 · 제40류 · 제44류 · 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 라. 자카드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용 천공카드(예: 제39류 · 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
 - 바. 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의 것이나 합성 · 재생한 귀석 · 반귀석이나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8522호).
 -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아. 드릴파이프(drill pipe)(제7304호)
 - 자.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15부)
 - 차.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
 - 카. 제17부의 물품
 - 타. 제90류의 물품
 -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 · 제42류 · 제43류 · 제45류 · 제59류 · 제6804호 · 제6909호).
 - 거. 제95류의 물품
 - 너.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스푼(spool)에 감긴 것인지 또는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제9612호로 분류한다], 또는 제9620호의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16부

2. 기계의 부분품(제84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6. 가. 이 표에서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전기·전자 조립품, 인쇄회로기판,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공정으로 원래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원래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수리·정비나 보수가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 2) 운송·적재·하역 작업 중 파손으로부터 개별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선적되지 않은 것나.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함께 섞여 있는 물품은 제8549호에 분류한다.
다. 이 부에는 제38류 주 제4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부에서 주요 **제외물품**은 다음과 같다.

- (a)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콘(cone)·코어(core)·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어떤 재료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경사(經絲)용 빔(warp beam)은 보빈(bobbin)·스풀(spool)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지지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8448호**에 분류한다]
- (b)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汎用性) 부분품으로서 철강으로 만든 와이어(wire)·체인(chain)·볼트(bolt)·스크루(screw)와 스프링(spring)과 같은 것(**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나 제7320호**)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제8301호**의 자물쇠·**제8302호**의 문·창 등에 사용하는 장착구와 부착구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부에서 제외하며 **제39류**에 분류한다.

제16부

- (c)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예: **제40류**(고무)·**제42류**(가죽)·**제43류**(모피)·**제45류**[코르크(cork)]·**제59류**(방직용 섬유)·**제6804호**(연마재료 등)나 **제6909호**(도자기) 등].
 - (d) **제82류**의 그 밖의 물품[예: 공구·툴 팁(tool-tip)·칼과 칼날·비전기식의 이발기와 특정의 기계식 가정용 기구]과 **제83류**의 물품
 - (e) **제17부**의 물품
 - (f) **제18부**의 물품
 - (g) 무기와 총포탄(**제93류**)
 - (h)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비전기식 모터(motor)와 엔진을 포함하지만, 액체 펌프와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이들은 **제8413호**나 **제8421호**에 각각 분류한다)와 전동기·전기식 변압기와 무선 원격조절기기(이들은 **제8501호**·**제8504호**나 **제8526호**에 각각 분류한다)는 **제외한다**](**제95류**)
 - (ij)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브러시(brush)(**제9603호**)
-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conveyor)의 벨트(belt)나 벨팅(belting)(**제39류**) ; 비경화(非硬化) 가황고무로 만든 물품(예: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과 와셔(washer) 등(**제4016호**)
 - (b) 가죽 제품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예: 직기에 사용하는 피커(picker)](**제4205호**)이나 모피 제품(**제4303호**)
 - (c)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예: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conveyor)의 벨트(conveyor belt)](**제5910호**)·펠트패드(felt pad)와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 (d) **제69류**의 특정의 도자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 (f) 전부가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나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 (g) 금속의 선(線)이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endless belt)(**제15부**)

(II) 부분품
(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 (A)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
- (B)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 (C) 제8444호부터 제8447호까지의 섬유기계 부분품(제8448호)
- (D)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 부분품(제8466호)
- (E)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 (F)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
- (G)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제8522호)
- (H)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
- (I) 제8535호·제8536호나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제8538호)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
-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 (3) 권양(捲揚 : lifting)용이나 취급(handling)용 기계류(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나 제8486호)
- (4) 탭(tap)·코크(cock)·밸브(valve) 등(제8481호)
- (5) 볼베어링(ball bearing)·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과 최대 오차가 1% 이하나 0.05mm 이하 (어느 쪽이든 최대 오차가 작은 것)의 연마된 강구(鋼球)(제8482호)
- (6)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 기어 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flywheel)·풀리(pulley)와 풀리블록(pulley block)·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제8483호)
- (7) 제8484호의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
- (8) 제8501호의 전동기
- (9) 제8504호의 변압기와 그 밖의 기기
- (10) 전지 팩(battery pack)에 조립된 축전지(제8507호)
- (11) 전열용 저항체(제8516호)
- (12) 축전기(제8532호)
- (1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switch)·퓨즈(fuse)]·접속함 등 (제8535호와 제8536호)

- (14) 보드(board) · 패널(panel) · 콘솔(console) · 데스크(desk) · 캐비닛(cabinet)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제8537호)
- (15) 제8539호의 램프류
- (16) 제8540호의 밸브(valve)와 튜브(tube)와 제8541호의 다이오드(diode) · 트랜지스터(transistor) 등
- (17) 전기용의 탄소제품(예: 아크 램프용 탄소봉 · 탄소전극과 탄소브러시)(제8545호)
- (18) 여러 가지 재료의 애자(insulator)(제8546호)
- (19) 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의 절연용 물품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지 않는 한** 제8487호(비전기식)나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제8484호(개스킷 등), 제8544호(절연전선), 제8545호(전기용 탄소제품), 제8546호[애자(insulator)]나 제8547호(전선용 도관)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가 속하는 류로 분류한다.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부에 분류한다. 다만, 철강으로 만든 조단조품(粗鍛造品 : rough forging)은 **제7207호**에 분류한다.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

(통칙 제2호가목과 제3호나목, 부의 주 제3호와 제4호 참조)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 · 온도계 · 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 출력계 · 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 · 컨트롤패널(control panel) · 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 · 검사 · 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아래 VI항 참조)이나 기능단위기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동일한 형(型)인지에 상관없다]를 측정 · 검사 · 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IV) 불완전한 기계(incomplete machine)

(통칙 제2호가목 참조)

이 부의 각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장치에는 완전한 기계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flywheel) · 베드플레이트(bed plate) · 캘린더롤(calender roll) · 툴홀더(tool holder) 등 만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않고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식 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V) 조립되지 않은 기계(unassembled machine)

(통칙 제2호가목 참조)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계들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 호에 분류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한다. 이와 동일한 분류방식이 완전한 기계의 특성(위의 IV항 참조)을 갖는 불완전한 기계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이 점에 대해서는 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도 참조)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완전한 기계용이나 완전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불완전한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조립되지 않은 구성부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VI)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부의 주 제3호)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milling)·보링(boring)·래핑(lapp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 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조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이러한 복합기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종이를 접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제8443호); 이롭이나 간단한 도안을 인쇄하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판지로 만든 상자 제조기계(제8441호);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와 결합된 공업용 로(爐)(제8417호나 제8514호); 보조적인 포장기계와 결합된 담배제조기(제8478호)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동상(common base)·동일 프레임(common frame) 위나 동일 하우징(common housing)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된 것(fitted together to form a whole)**으로 취급한다.

기계의 집합체(assemblies of machine)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同床)·동일 프레임·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않은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한다**.

복합기계는 사용 중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베이스(base)·프레임(frame)이나 하우징(housing)에 바퀴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만**, 그로 인하여 이 표의 특정 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물품(예: 차량)의 성격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바닥(floor)·콘크리트로 만든 베이스(base)·벽·칸막이·천장 등은 기계나 장치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도 해당 기계나 장치를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 : common base)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 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

다용도기계(multi-purpose machine)[예: 금속과 그 밖의 재료의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나 종이·방직용섬유·가죽·플라스틱 등 공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이레팅기(eyeletting machine)]는 제84류의 주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VII)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

(부의 주 제4호)

이 주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combination of machines)을 포함한다]가 제84류나 제85류(제85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편의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공기·압축가스·기름 등을 운송하는)·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부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

이 부의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 유압동력장치[주로 유압펌프·전동기·컨트롤 밸브(control valve)와 오일탱크(oil tank)로 구성된다], 유압실린더와 실린더를 유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pipe)나 호스(hose)로 구성된다(제8412호).
- (2)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지는 않으나 냉매(coolant)를 순환시키는 관(piping)으로 서로 연결된 구성부품으로 구성된 냉장설비(제8418호)
- (3) 관개(灌溉) 시스템 :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필터(filter)·주입기·계량밸브 등으로 구성된다]과 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 이루어진다(제8424호).
- (4) 착유기(搾乳機) : 개개의 구성부품[진공펌프·교반기·유두(乳頭 : teat)컵과 통]이 호스(hose)나 파이프(piping)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제8434호).
- (5) 양조장 기계 : 특히, 발아기(sprouting or germination machine)·맥아과쇄기·반죽통·여과통 등으로 구성된다(제8438호). 그러나 보조 장치[예: 병주입기·레이블인쇄기(label-printing machine)]는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6) 편지분류시스템 : 필수적으로 코딩데스크(coding desk)·예비분류채널 시스템·중간분류기와 최종분류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체가 자동자료처리기에 의하여 제어된다(제8472호).

제16부

- (7) 아스팔트 플랜트(asphalt plant) : 개개의 구성부품[예: 피드 호퍼(feed hopper) · 컨베이어(conveyor) · 건조기 · 진동체 · 혼합기 · 저장통과 제어장치(control unit)]이 나란히 장치되어 있다(제8474호).
- (8) 전기 필라멘트 램프 조립용 기계 : 구성부품이 컨베이어(conveyor)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유리의 열처리용 장치와 펌프(pump)와 램프테스트 유닛(lamp-testing unit)을 포함한다(제8475호).
- (9) 용접기기 :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 발전기나 정류기가 붙은 용접용 헤드나 용접용 집게(tongs)로 구성된다(제8515호).
- (10) 휴대용 무선전화송신기와 이에 부수되는 수지식 마이크로폰(hand microphone)(제8517호)
- (11) 레이더기기와 이에 부수되는 파워팩(power pack), 증폭기 등(제8526호)
- (12) 위성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 : 수신기 · 파라볼라(parabolic) 안테나 반사판 · 반사판 제어회전자 · 피드 혼(feed horn)(도파관) · 편광판(polarizer) · 저잡음차단(LNB : low-noise-block) 변환기와 적외선 원격 조절 기기로 구성된다(제8528호).
- (13) 도난경보기 : 예를 들면, 전체가 적외선램프 · 광전지와 벨(bell)로 구성된다(제8531호).

제1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부품은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 · 스위치(switch) · 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와/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도 포함한다)에 동축케이블로 구성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

(VIII) 이동식의 기계류(mobile machinery)

자주식(自走式 : self-propelled) 기계와 그 밖의 이동식 기계에 관하여는 기계에 대한 각 호의 해설[예: 제8425호에서 제8428호까지의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의 기계와 제8429호와 제8430호의 굴착용 기계]과 제17부의 각 류와 각 호의 해설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 (machinery and apparatus for use in laboratories)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소형의 로(爐) · 증류장치 · 분쇄기 · 혼합기 · 변압기와 축전기(capacitor)는 이 부에 분류한다.

(X)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e-웨이스트) (부주 제6호)

제16부 주 제6호에서의 “원래의 용도(original purpose)”란 전기 · 전자 제품으로서의 기능적 용도를 말한다.

제 8 4 류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68류의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물품
-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 다.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
- 라. 제7321호나 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
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 마.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
- 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 사. 제17부의 물품용의 방열기
- 아.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제9603호)

2.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가. 다만, 제84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1) 발아용 기기 · 부란기 · 양육기(제8436호)
- 2) 곡물 가습기(제8437호)
- 3) 당즙 추출용 칩출기(제8438호)
- 4) 방직용 섬유사 · 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 5)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 · 설비 · 실험실 장비로서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

나. 제842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1) 자루나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 2)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다. 제842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1)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
 - 2) 워터젯 절단기(제8456호)
3.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로 분류한다.
4. 제8457호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 가.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 따라 매겨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re)]
 -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닛헤드(unit head)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으로 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의 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 다. 가공물을 서로 다른 유닛헤드(unit head)로 자동 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5. 제8462호에서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란 코일 풀기용 기계·코일 편평기·슬리터(slitter)·코일 감기용 기계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평판제품용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란 코일 풀기용 기계·코일 편평기·전단기(剪斷機)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6.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위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
-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6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제16부
제84류

-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3) 확성기, 마이크로폰
 -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7. 공칭(公稱) 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구(鋼球)는 특히 제8482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강구(鋼球)는 제7326호로 분류한다.
 8.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선·방직용 섬유사·그 밖의 재료나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된다[예: 스트랜딩(stranding)기, 트위스팅(twisting)기, 케이블링(cabling)기].
 9. 제8470호에서 “포켓 사이즈”라는 용어는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기계에만 적용한다.
 10. 제8485호에서 “적층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란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5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5호에 분류한다.
 11. 가. 제85류의 주 제12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
 - 나.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 제조나 평판에 인쇄회로기판이나 그 밖의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
- 다. 제8486호에는 다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 1)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수리
 -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 3)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囊荷)
-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8465.20 호의 목적상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란 목재, 코르크, 뼈, 경질 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로서,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것에만 적용한다.
2. 소호 제 8471.49 호에서 “시스템”이란 제 84 류의 주 제 6 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 소호 제 8481.20 호에서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에너지 원천이 가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 또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특별히 “유체 동력”의 전송에 사용되는 밸브를 말한다. 이러한 밸브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예: 감압형, 체크(check)형]. 소호 제 8481.20 호는 제 8481 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4. 소호 제 8482.40 호는 지름이 5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지름의 세 배 이상인 원통 물리를 갖춘 베어링에만 적용한다. 물리의 양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 (a)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공업용 제품(제5911호)
- (b) 제68류의 석제품 등
- (c) 제69류의 도자제품
- (d) 제7017호의 실험실용·화학용 유리제품 ; 유리제의 기계류와 장치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
- (e) 제7321호나 제7322호의 스토브(stove)·중앙난방용 방열기(放熱機)와 그 밖의 물품과 비(卑)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 (f) 제8509호의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 ;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 (g) 제17부의 물품용의 방열기(제17부)
- (h) 모터(motor)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 청소기(수동식의 것)(제9603호)

일반적으로 제84류에는 기계류와 기계식 장치가 포함되고 제85류에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의 기계는 제85류의 각 호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고(예: 전자기계식 가정용 기기), 반면에 제84류에는 특정의 비기계식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예: 증기발생 보일러와 그 부속기기와 여과기 등).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와 장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
- (2) 전기가열식의 기계류. 예를 들면, 제8403호의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 제8419호의 기계류와 전기가열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계[예: 캘린더기(calender), 직물의 세탁용이나 표백용 기계나 프레스기(press)]

- (3) 전자기식(電磁氣式)의 기계(예: 전자석 밸브)나 전자기식 장치를 갖춘 기계[예: 전자기식 자동정지 장치를 갖춘 직기, 전자기식의 리프팅 헤드(lifting head)를 갖춘 크레인(crane)이나 전자기식 척(chuck)을 갖춘 선반]
- (4) 전자식의 기계(예: 전자식의 계산기나 자동자료처리기계)나 광전(光電)식이나 전자식의 장치를 갖춘 기계(예: 광전(光電)식 장치(photo-electric apparatus)를 갖춘 금속압연기와 여러 가지의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device)를 갖춘 공작기계)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pump)]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실험실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로 만든 기기와 유리로 만든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그 밖의 재료로 구성된 스톱퍼(stopper)·조인트(joint)·탭(tap)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나 칼라(collar)나 그 밖의 고정 장치나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이나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실험실용 유리제품·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기기류와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 (i)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나 유리의 조합품 ; 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나 유리 성분의 구성 비율이 높은 물품
- (ii)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정적(static)인 부분의 조합품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 (1) 제8401호에는 원자로·방사선을 조사(照射 : irradiate)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분리용의 기기를 분류한다.
- (2) 제8402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상관없이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 (3) 제8425호부터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 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이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계와 기계식 기구를 분류한다.
- (5)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몰딩박스(moulding box)와 몰딩패턴(moulding pattern)뿐만 아니라 손이나 기계에 의하여 어느 특정 재료의 몰딩(moulding)에 사용하는 주형[잉곳(ingot)용 주형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6) 제8481호부터 제8484호까지에는 기계의 부분품이나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汎用性)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 (7)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집적회로나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專用)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 규정한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 (8) 제8487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전기식 부분품을 분류한다.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전동기(제8501호) ; 전기변압기(제8504호) ; 전자석 · 영구자석 · 크레인용의 전자석리프팅헤드와 전자석식 척(chuck)(제8505호) ;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시동용 기기(제8511호) ; 전기스위치 · 제어반 · 플러그 · 접속함 등(제8535호부터 제8537호까지) ; 전자관(제8540호) ; 다이오드(diode) · 트랜지스터(transistor)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 ;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 전기 탄소(제8545호) ; 애자(insulator)(제8546호) ; 특정의 전기절연용 물품(제8547호).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각 호에 분류한다.

그 밖의 전기식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만일 이들 부분품들이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나 제8473호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면 이들 각 호에 분류한다.
- (2) 그렇지 않으면 이 류에서는 이들 부분품들이 특정 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하여** 그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하고,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면 제8548호에 분류한다.

(D) 이 류의 둘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

(류의 주 제2호, 제8호와 제11호라목)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않으며 ; 제8486호로 분류한다.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는 산업의 각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와 장치(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 특별히 포함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그 밖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와 장치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이나 활용 분야에 따라 열거하였다.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로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라 그 해당하는 호의 하나가 첫째 그룹(즉,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에 속하는 것은 그 그룹에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모터(motor)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와 제8410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분류한다. 이 분류 원칙은 펌프[비록 특정용도(예: 방직용 펌프나 농업용 펌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일지라도] · 원심분리기 · 캘린더기(calender) · 여과용 프레스 · 노(爐: furnace) · 증기발생기 등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일반원칙에 대하여는 제8419호 · 제8422호와 제8424호에 관한 몇 가지의 예외규정(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하였다)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물품은 당연히 제8419호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 류의 이후 호에 분류한다.

- (1) 농업용의 발아용기기 · 가금(家禽)용의 부란기(incubator)와 양육기(brooder)(제8436호)
- (2) 곡물가습기(제8437호)
- (3) 당즙추출용의 침출기(diffusing apparatus)(제8438호)

- (4) 방직용 섬유사·직물류나 직물류의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 (5)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설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

이와 유사하게 다음의 물품은 당연히 제8422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 류의 이후 호들에 분류한다.

- (1) 재봉기[예: 자루(sack)의 봉합용의 것](제8452호)
- (2) 서류나 통신문을 포장지나 봉투에 삽입하고 봉합하는 기계류와 화폐계수기나 포장기(제8472호)

또한 다음의 것들은 제8424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류의 이후 호들에 분류한다.

- (1) 잉크젯(ink-jet)방식 인쇄기(제8443호)
- (2) 워터제트(water-jet) 절단기(제8456호)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에 대한 우선 규정은 전체가 하나의 기계로 인정되는 기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의하여 분류하며 기능단위 기계는 이 부의 주 제4호에 의하여 분류한다[16부 총설 (VI)와 (VII)을 참조].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 이외의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류는 가장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나 해당 기계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여러 종류의 다른 목적이나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다목적 기계[예: 종이·방직용섬유·가죽·플라스틱 등의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이레팅기(eyeletting machine)]는 제8479호로 분류한다.

**(E)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 류의 주 제6호마목)

제84류의 주 제6호마목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분류원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그 특별히 포함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잔여 호에 분류하며, 제8471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2)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에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만약, 전체가 제16부의 주 제4호나 제90류의 주 제3호를 적용하여 제84류·제85류나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분리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다른 기계는 그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8401.10 - 원자로
- 8401.2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 8401.3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 8401.40 - 원자로의 부분품

(I) 원자로

원자로(nuclear reactor)란 일반적으로 생물보호용 방사선 차폐물(shield) 그 자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와 그 차폐물에 의하여 차단된 구역 내의 모든 장치와 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차폐물(screen)의 **내측에** 포함되어 있는 장치와 기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차폐된 구역 **밖에** 있는 다른 장치와 기기도 포함한다.

원자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으로 구성된다.

(A) **노심부(爐心部 : core)**(다음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 (1) **핵연료[핵분열성(fissile)이나 핵연료성(fertile)의 것]**. 감속재(moderator) 중에 용해나 분산되어 있거나(균질형 원자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중에 농축되어 있다(비균질형 원자로).
- (2) **감속재(moderator)**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중성자 반사체[예: 베릴륨(beryllium) · 흑연 · 물 · 중수(heavy water) · 디페닐(diphenyl)이나 터페닐(terphenyl)과 같은 특정의 탄화수소]
- (3) **냉각체(coolant)**. 이것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이산화탄소 · 헬륨 · 중수(heavy water) · 용융(鎔融 : molten)나트륨이나 용융(鎔融)비스무트 · 용융(鎔融)한 나트륨과 칼륨의 혼합물 · 용융(鎔融)염 · 특정의 탄화수소 등이 흔히 이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감속재(moderator)가 흔히 냉각체로도 작용된다.
- (4) **제어봉(制御棒 : control rod)** : 중성자(neutron)를 흡수하는 능력을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 물질의 것(예: 붕소 · 카드뮴 · 하프늄)이나 이러한 물질의 합금으로 만든 것이나 화합물로 만든 것이 있다.

(B) **기계적 구조물**[예: 원자로 용기 ; 핵연료 요소(카트리지) 로딩용 격자 ; 냉각체의 이송용 배관 ; 밸브 ; 제어봉의 조작기구 등]

(C) **측정용 · 검사용이나 자동 제어용의 기기**[예: 중성자원(中性子源 : neutron source) · 전리함 · 열전대(thermocouple) · 망원사진기 · 압력계나 유량계]

(D) **열 차폐물(shields)이나 생물학적인 차폐물**[강(鋼) · 콘크리트나 납으로 만든 것 등]

어떤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장치와 기기가 또한 원자로 설비에 사용하기도 하며, 생물보호용 방사선 차폐물(shield)에 의하여 차단되는 구역 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원자로의 부분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해야 한다 [아래 **제외규정** (c)에서 (ij)까지를 참조할 것].

다만, 원자로의 구성 부분품의 성질·특징과 조립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원자로의 다양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관점에 의하여 구별된다.

- (1) 연쇄반응(chain reaction)을 증식시키는 중성자의 에너지[예: 열(저속)로·중속로와 고속로]
- (2) 원자로의 노심부(爐心部 : core) 안에서 핵분열성(fissile) 물질의 배분(예: 균질형 원자로와 비균질형 원자로)
- (3) 사용목적[예: 연구용 로·동위원소생산용 로·재료시험용 로·핵분열연료 물질을 핵분열성 물질로 전환하는 노(爐)(전환로와 증식로)·추진용 로·열에너지나 전기에너지의 발생로 등]
- (4) 사용재료의 종류와 작동의 원리[예: 천연우라늄·농축우라늄·우라늄-토륨·나트륨-흑연·기체흑연·가압수·가압중수·비등수(boiling water)·스위밍 풀(swimming pool)·유기감속기 형식의 노(爐)]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크기는 최소한 “**임계(臨界 : critical)**”현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성자의 외부손실로 인하여 연쇄반응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나 연구목적으로는 중성자원의 추가를 요하는 “**아임계(亞臨界) 원자로(subcritical reactor)**”가 가끔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노(爐)도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

원자로의 **부분품**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16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제어봉(control rod)과 제어봉 작동기구로의 핵분열반응을 촉발시키기 위하여 부착한 중성자원·용기·핵연료 요소(카트리지)의 삽입용 격자(grid)와 가압 경수로(輕水爐 : water reactor)의 가압기(pressuriser)는 원자로의 부분품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원자로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a) 흑연(제3801호나 제6815호)·베릴륨(제8112호)이나 산화베릴륨(제6914호) 등의 블록(block)
- (b) 금속의 관(metal tube and pipe)(특수 형태로 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고 단지 성형만 한 것으로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한 것. 그러나 원자로의 건설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15부)
- (c) 증기 보일러와 그 밖의 증기발생 보일러(제8402호)
- (d) 열교환기(제8404호나 제8419호)
- (e) 증기터빈과 그 밖의 증기터빈(제8406호)
- (f) 펌프(제8413호나 제8414호)
- (g) 송풍기(제8414호)
- (h) 물에서 광물성 물질을 추출하는 장치(일반적으로 제8419호나 제8421호)
- (ij) 연료 요소(fuel element)의 위치변경이나 추출용의 취급기기와 운반크레인(일반적으로 제8426호)
- (k) 방사성물품의 기계식 원격조정기(제8428호)

(II) 방사성 동위원소분리용 기기

이들 그룹은 동위원소 중의 하나의 원소를 화학적 원소나 화합물로 농축하거나 혼합 구성된 동위원소를 완전 분리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모든 기계적·열관계적·전기적 기기를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수(산화중수소)의 생산용이나 우라늄을 U235로 농축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들이다.

천연의 물을 농축하여 중수를 생산하는 기기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특수한 분별 분류(fractional distillation) 장치와 정류(精溜) 기기 : 클러스터(cluster)모양과 캐스케이드(cascade)모양의 정돈된 수많은 판으로 구성되고 중수와 표준수 간의 끓는점에 관한 아주 적은 차이점을 이용하는 기기이다[이것은 중수를 연속적으로 더욱더 감소시키는 초기분획물(head fraction)과 연속적으로 더욱 더 농축시키는 최종분획물(tail fraction)을 얻기 위한 것이다].
- (2) 액체수소의 저온 분류(分溜 : fractional distillation)에 의하여 중수소를 별도 분리하고 중수를 얻기 위하여 연소시킬 수 있는 기기
- (3) 동위원소 교환원리를 이용한(때로는 촉매제 존재 하에서) 중수나 중수소 화합물의 생산용 기기 : 예를 들면, 이중온도 방법에 의한 것이나 서로 다른 액체 상태나 가스 상태 수소의 접촉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 (4) 물의 전기분해에 의하여 중수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하는 전해전지와 생성된 수소와 생성되는 물 그 자체 사이의 동위원소교환과 함께 전기분해를 연결하는 기기

U235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는 다음 기기가 주로 자주 사용한다.

- (1) “가스(gas)”(6플루오르화 우라늄)원심분리기라 부르는 특수 원심분리기 :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나 철강으로 만든 원통형의 로터(rotor)(“사발(bowl)”)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

이들 원심분리기는 안쪽에 6플루오르화 우라늄에 의한 부식을 막도록 처리되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유닛(unit)을 사용하며 캐스케이드(cascade)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하강이나 역류 작동하는데 사용한다.

- (2)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기(기체확산형) : 이러한 장치 속에서 기체 상태의 6플루오르화 우라늄은 확산연소실[관(管)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안쪽에 있는 다공질(porous) 멤브레인(membrane) [“베리어(barrier)”]을 통한 확산에 의하여 시동 가스에 비교되는 우라늄 235의 함량이 약간 다른 두 개의 분획물(fraction)로 분리된다. 이와 같은 수많은 반복 작용에 의하여 순수한 6플루오르화 우라늄235가 얻어질 수 있다.
- (3) 가스(6플루오르화 우라늄과 헬륨이나 수소)의 분류를 고도로 만곡(incurve)된 노즐 속에 고속으로 주입시키는 기구인 “노즐(nozzle)” 장치(Becker process) : “페어링튜브(paring tube)”라는 출구에서 6플루오르화 우라늄의 농축된 분획물(fraction)을 분리한다.

전자적 질량 분리식 방식의 동위원소 분리장치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제16부 총설 참조), 이 그룹의 기기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포함한다.

(III) 방사선을 조사(照射 : irradiate)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방사선을 조사(照射 : irradiate)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는 일반적으로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예: 지르코늄·알루미늄·마그네슘·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쉬이드(sheath) 안에 포함된 핵분열성(fissile)이나 핵연료성(fertile) 물질로 되어 있으며, 취급상 특수 부착물을 부착해 놓은 것이다.

핵분열성 연료 요소(fissile fuel element)는 금속이나 화합물(산화물·탄화물·질화물 등) 형태의 천연우라늄, 금속상태나 화합물로서의 우라늄-235, 우라늄-233이나 플루토늄으로 농축된 우라늄, 플루토늄으로 농축된 토륨을 함유한다. 연료핵친원소(예: 토륨이나 감손 우라늄)를 중성자가 반사되도록 노(爐 : furnace) 주위에 갖다 놓으면 중성자가 약간 흡수된 후 핵분열성 물질이 된다.

원자로용 연료 요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가연성(可燃性)의 금속이나 합금으로서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피복된(被覆 : sheathed) 봉(bar)이나 관(管 : tube) 형태의 것. 이러한 금속으로 만든 피복관에는 열 교환이 용이하도록 플랜지(flange)가 붙어 있으며, 핵연료요소는 원자로에 삽입이나 인출이 편리하도록 지지물과 헤드(head)가 갖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
- (2) 흑연으로 짚은 봉·관이나 구(球) 모양의 흑연으로 만든 핵분열연료 분산제나 분산제와 서멧(cermet)의 그 밖의 형태로 구성되는 핵분열연료 분산제. 이들은 위의 (1)에 설명된 핵연료요소 [카트리지(cartridge)]와 똑같은 방법으로 플랜지(flange)를 붙였거나 부착물을 붙였다.
- (3) 조립품으로서 다음의 것이 있다.
 - (i) 불활성(inert)의 금속으로 외층이 피복(被覆 : coated)된 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금속이나 세라믹복합체(ceramic compound)]로 구성되는 일종의 샌드위치관
 - (ii) 우라늄의 이산화물이나 탄화물의 펠릿(pellet)을 충전한 불활성 금속으로 만든 관(tube) 또는
 - (iii) 불활성(inert)금속으로 피복(被覆 : sheathed)된 농축한 핵분열성 금속 관(tube)

이들 모든 모양의 핵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는 적당한 위치로 간격을 띄어서 맞게 하는 지지물이 고정되어 있으며 ; 이러한 것은 때때로 외부 케이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핵 연료 요소를 구성하는 모든 보조 요소(sub-element)는 동일 베이스에 장착되어 있거나 동일 헤드에 부착되어 있다.

이들 보조 요소(sub-element)[예: 핵연료로 충전되었거나 봉합된 스테인리스 스틸 쉬이드(stainless steel sheath)]가 따로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이들은 핵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구(球) 모양이나 프리즘 모양(角柱狀 : prismatic)의 핵연료요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탄소나 탄화규소의 층으로 피복된 핵연료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와 이미 사용한[방사선을 조사(照射)한] 핵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는 **제2844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고온야금법(pyrometallurgical process)에 의하여 방사선을 조사(照射 : irradiate)한 핵연료의 분리용 노(爐 : furnace)(경우에 따라서 **제8417호**나 **제8514호**)
- (b)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방사선을 조사(照射 : irradiate)한 핵연료용이나 폐수처리용의 분리기(중수생산용의 것은 **제외한다**)(**제8419호**)
- (c) 방사성 먼지를 제거하도록 특수 제작된 에어필터(air filter)(물리형이나 정전기형) ; 방사성 옥소(iodine) 보호용의 활성탄 청정기 ; 방사성 원소 분리용의 이온교환장치(전기투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를 포함한다) ; 방사선을 조사(照射 : irradiate)한 핵연료용이나 폐수처리용의 분리기(이온교환작용의 것이나 화학적 작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421호**)

**84.02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8402.12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402.19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8402.2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402.90 - 부분품

(A) 증기발생보일러

이 그룹에는 증기(예: 수증기)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원동기(예: 증기터빈)나 그 밖의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기계(예: 증기해머와 펌프)를 구동하거나 가열용·조리용·소독용 등의 기계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해당되며, 중앙난방용의 증기발생보일러도 포함한다.

어떤 특정한 기계·장치나 차량의 전용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 명백한 보일러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제시된 것(예: 기관차용 보일러)은 이 호에 분류한다.

증기발생보일러(steam boiler)는 고체연료·액체연료나 기체연료에 의하여 가열되거나 전기로 가열될 수 있다.

연료연소보일러(fuel-burning boiler)로부터 열효율을 향상하거나 증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하여 구조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보일러가 생산되었으며, 그 주된 형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1) **연관(煙管)보일러(firetube boiler)**(예: 기관차용 보일러) : 보일러의 동체 내에는 연소가스가 통과되는 연관이 가로질러져 있다.
- (2) **수관(水管)보일러(watertube boiler)** : 이 형의 보일러는 여러 개의 수관(watertub)이 연소가스로 둘러 싸여져 있고 ; 어떤 것은 그 내벽이 수관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 (3) **혼성보일러(hybrid boiler)**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의 (1)형과 (2)형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어떤 보일러에 있어서 관(管 : tube)의 시스템은 한 개 이상의 원통형 동체에 콜렉터(collector)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원통형 동체는 보일러수를 저장해 주거나 보일러수와 증기를 분리시켜준다. 그 밖의 보일러 중 **강제순환 보일러**로 알려진 것은 흔히 증발 드럼이 없고 보일러의 순환은 펌프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다.

보일러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소형 보일러는 보통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의 외관(shell)속에 수용하거나 동상(同床 : common base)에 장착시켜 조립한 상태로 제시하며, 대형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외관이나 벽돌 구조물 속에 다수의 개별부품을 취급현장에서 조립 작업을 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B)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는 보일러수를 매우 높은 압력으로 공급하여 그 정상적인 기화 온도를 훨씬 초과하는 온도(보통 섭씨 180도 정도나 그 이상)까지 가열할 수 있도록 된 보일러를 말한다.

이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위의 (A)에 기재한 보일러와 매우 유사하다. 그 작동에 필요한 압력은, 예를 들면, 증발 드림에 증기를 축적함으로써 얻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활성가스(inert gas : 일반적으로 질소)의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보일러의 내부에서 생성된 과열수는 언제나 가압 하에 유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일러에서 나와서 그 보일러로 되돌아가면서 밀폐 관로를 순환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는 공장설비[예를 들면, 자동차의 차체의 페인트 건조용터널노(爐)]나 군집한 빌딩이나 지역난방시설의 대집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거리의 지점에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열은 과열수[일차유체(一次流體 : primary fluid)]가 이러한 지역의 시설을 가열하는 이차유체(secondary fluid)에 그 열량을 전달하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통하여 공급된다.

*
* *

이 호의 보일러는 그 출력이나 효율을 증대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때로는 광범위한 부속기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부속기기에는 제8404호에 해당하는 연료절약기(economiser)·공기에열기(豫熱器 : air pre-heater)·과열기(super-heater)·과열저감기(de-super-heater)·수증기(受蒸器 : steam receiver)·증기비축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수관식로벽(水管式爐壁 : watertube fire-box wall)이나 그 밖의 기기와 제8421호의 급수용 청정기·탈기기(de-aerator)·탈가스기(de-gasifier)와 연수기(軟水器 : softener)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속기기는 보일러와 함께 제시하여 전체가 보일러로서 이미 일체 구조로 되어 있거나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보일러에 분류하고 ; 분리되어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각 열거된 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또한 보일러와 함께 제시된 불판(grate)이 전체로서 보일러와 일체 구조가 되도록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보일러와 함께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보일러와 결합되어 있는 불판과 벽돌 구조물에 의하여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된 불판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 호에서는 단순히 물을 정상의 기화점(vaporisation point)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하도록 제작된 보일러와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는 저압의 증기발생이 가능한 것일지라도 **제외한다(제8403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부분품, 예를 들면, 보일러의 동체(body)와 베이스(base)·보일러의 내부 조립물[관(tube)의 조립체로 구성된 것]·수관용 캡(cap)·헤더(header)·보일러 드럼·증기돔(steam dome)·비기계식(non-mechanical) 화실·검사용 커버·가용(可溶)플러그를 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금속으로 만든 튜브(tube)나 관(pipe)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

84.03 -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 보일러

8403.90 - 부분품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중앙난방용 보일러**[제7321호의 보조보일러를 구비한 스토브(stove)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연료(예: 나무·석탄·코크스·가스·중유)를 사용하여 가열한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가정·바다·공장·작업소·온실 등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를 포함한다.

이들에는 압력조절기와 압력계·액면계·탭(tap)·콕(cock)·버너(burner)와 이와 유사한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는 비록 저압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여**(제16부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보일러 튜브·보일러 케이싱(boiler casing)·벽·도어(door)와 맨홀이나 검사 포트(port)커버 등과 같은 중앙난방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a) 중앙난방용 보일러와 방열기를 접속하기 위한 관(pipe)과 연결구류(fittings)(일반적으로 **제7303호부터 제7307호까지**)
- (b) 익스팬션 레저부아(expansion reservoir)와 체임버(chamber)(**제7309호, 제7310호나 제8479호**)
- (c) 노(爐 : furnace)용 버너(**제8416호**)
- (d) 증기나 온수용 탭(tap)·콕(cock) 등(**제8481호**)

84.04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8404.2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90 - 부분품

(A)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연료절약기(economiser)** : 연도(煙道 :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스의 여열(餘熱 : waste heat)이나 어떠한 기계 형태에서는 배출증기의 여열(餘熱)을 이용하여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이다. 연료절약기는 일반적으로 방열관이 붙은(gilled) 주철관이나 강관을 배열하여 결합시킨 헤더(header)(관받침)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때로는 금속판으로 만든 체임버(chamber) 안에 넣고 연도가스나 배출증기가 통과되도록 되어 있다. 혼합형 연료절약기 안에서 여분의 수증기가 급수가 담긴 체임버 속에서 직접 통과된다.
- (2) **공기에열기(air pre-heater)** : 역시 여열(餘熱)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열(傳熱 : heat exchange)장치를 갖는 공기의 체임버로 구성된다. 전열과정에 따라 예를 들면, 뜨거운 연도(煙道 : flue) 가스가 관속을 순환함으로써 체임버 속의 공기를 가열시키는 관(管) 모양이 있고 ; 공기와 연기가 별개로 나란히 배열된 좁은 격실을 순환하는 판 모양이 있다. 어떤 것은 회전판과 결합된 것도 있다.
- (3) **과열기(super-heater)** : 고압강관의 배관이 붙은 헤더(header)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포화증기를 재가열하여 포화 증기 속에 함유된 수분을 증발시키고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과열기는 보일러 본체와 함께 조합되는 부속식이 있고 분리된 노(爐 : furnace)를 갖는 독립식이 있다.
- (4) **과열저감기(de-super-heater)** : 과열기에서의 과열온도가 소요의 온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로서 보통 두 개의 과열기의 중간에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과열된 증기가 통과하면서 물의 흐름에 의하여 냉각되는 주철(鑄鐵 : cast iron)로 만든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 (5) **증기콜렉터(steam collector)** : 여러 개의 보일러로부터 발생증기를 수집하기 위한 원통형의 용기이다.
- (6) **증기비축기(steam accumulator)** : 잉여증기를 저장하기 위한 대형 원통형의 고압 단열 용기이다.
- (7) **열비축기(thermic or heat accumulator)** : 증기발생보일러로부터 나오는 여열(餘熱)을 비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8) **수관식로벽(水管式爐壁 : tubular furnace-wall)** : 즉, 보일러의 급수가 순환하는 도관에 접촉되는 수직식 수관(水管 : watertube)장치로서 노(爐 : furnace) 벽의 내면 앞에 설비하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노(爐)벽의 과열방지과 급수예열(豫熱 : pre-heating)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 (9) **그을음제거기(soot remover : soot blower)**(자동이나 비자동식) : 증기발생장치의 관(管) 모양 부분품[예: 과열기·수관(水管 : watertube)·연관과 연료절약기(economiser)]으로부터 그을음과 그 밖의 유사한 퇴적물을 증기나 압축 공기의 분사에 의하여 제거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여러 개의 분사구를 가지고 있으며 증기나 압축공기의 도관에 접속되어 있는 관[고정식이나 인입식(引入式 : retractabl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의 그을음 제거기에는 인입식 분사형의 것이 있다.
- (10) **가스회수기(gas recoverer)** : 불연소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배기 가스를 노(爐 : furnace) 내에 되돌려 보내는 장치이다.
- (11) **슬러지 제거기(sludge scraper)**

(B)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배출 증기의 냉각과 응축에 의하여 증기원동기 내의 배압을 저하시키고 또한 증기원동기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갖는 여러 가지 형태의 증기응축기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표면응축기(surface-condenser)** : 이들은 관(管) 시스템을 에워싼 원통형 외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기는 실린더(cylinder)내로 도입되고, 냉각수는 관을 통하여 순환함으로써(경우에 따라 반대일 경우도 있다) 증기가 응축되는 것이다.
- (2) **혼합응축기(mixing condenser)** : 이 형에서는 증기와 물이 직접 혼합된다. 이 호에는 이젝터 펌프(ejector pump) 내의 분사와 같은 원리의 작용을 하는 물의 분사에 의하여 응축기실 내에 부분적 진공을 형성하는 이젝터 응축기를 포함한다.
- (3) **공기냉각식 응축기(air-cooled condenser)** : 이 형은 공기의 강제 통풍에 의하여 냉각되는 방열판이 붙은 증기관으로 구성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제16부 총설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또한 앞에서 설명한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관(tube·pipe)이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보일러 하우스(boiler-house)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8413호**나 **제8414호**에 해당되는 펌프[보일러의 강제급수용 이젝터(ejector)를 포함한다]·송풍기(blower)·팬(fan)과 그 밖의 기기
- (b) 노(爐 : furnace)용 버너·기계식 불판과 메커니컬 스토커(mechanical stoker)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제8416호**)
- (c) **제8419호**에 해당되는 증류용과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는 응축기(凝縮器 : condenser)
- (d) 물·가스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제8421호**)

84.05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90 - 부분품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발생로가스(producer gas)·수성(水性)가스(water gas)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 다만, 그 용도를 예를 들면, 조명용·공업적 가열용·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 등이 있다.

이 호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가 포함되나 실제로는 램프에 불과하며 버너만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제9405호)는 제외한다.

(A)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

이 발생기(generator)는 일반적으로 불판(고정식·진동식이나 회전식)가 들어 있는 내화성의 내장이 되었거나 수냉식으로 된 이중벽과 흡인이나 송풍에 의하여 공기(또는 공기와 증기)의 흐름을 통과시키는 장치를 갖춘 밀폐식의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되어 있다. 두꺼운 연료층은 불판 위에서 연소되고 공기와 증기의 유량은 연소가 불완전하도록 조절된다. 물의 분해 작용과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생긴 일산화탄소·수소와 질소[발생로가스(producer gas)]의 혼합 가스는 이 장치의 상부에서 제거된다.

“반전(反轉)연소식(reversed combustion)”의 발생기에 있어서는 공기는 상부로부터 실린더(cylinder)의 측면벽을 통하여 하부에 송풍되고, 가스는 불판의 하부에 있는 장치의 밑바닥에 모여져 타르 등의 보다 완전한 연소를 돕는다.

(B) 수성(水性)가스(water gas) 발생기

발생로가스 발생기와 유사하나 공기와 물이나 증기를 장치 내에 번갈아 불어 넣도록 제작되어 있다. 물을 불어 넣었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발생로가스(producer gas)보다 훨씬 높은 열량을 갖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수성(水性)가스]이다. 이 가스는 공기를 불어 넣었을 때 얻는 발생로가스로부터 분리되어 수집되거나 그러한 두 가지의 가스가 혼합된다.

*
* *

발생로가스발생기와 수성(水性)가스발생기는 다 같이 여러 가지의 고체연료[예: 석탄·코크스(coke)·목탄·나무·식물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연소시키도록 제작되어 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특히 가스 엔진에 사용하기 위한 발생로가스나 수성(水性)가스는 먼지·타르(tar)·황화물(sulphurous compound) 등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때에 따라서는 재가열되거나 냉각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가스발생기에는 청정기[구멍뚫린 원추·코크스 베드(coke bed)와 가스세정기 등으로 구성]·냉각기·건조기·재열기(再熱器: reheater) 등이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청정기와 그 밖의 보조기기가 가스발생기와 함께 제시하고 또한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면 가스발생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가스발생기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각 열거된 호(예: **제8421호**의 청정기)에 분류한다.

(C)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

이들은 일반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물로 밀폐한 가스저장기로 구성되며, 가스가 충전되어 방출될 때, 이 가스 저장기의 움직임이 가스발생장치를 자동적으로 제어해준다. 이 발생장치에는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 (1) 물 속에 탄화칼슘(calcium carbide)의 덩어리를 간헐적(intermittent)으로 침입시키는 것
- (2) 물에 탄화물(carbide)을 서서히 첨가하는 것
- (3) 탄화물 위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그 밖의 것에는 **산소발생기**(예: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ethylene generator)**(예: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발생기의 본체·불판·가스 수집기와 물과 탄화물(carbide)의 혼합기].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가스 터빈용의 프리피스톤식(free-piston) 가스발생기(**제8414호**)
- (b) 코크스로(coke oven)(예: 도시가스 발생기)(**제8417호**)
- (c) 비(非)치료용으로 제작된 전기식의 오존발생장치와 오존화산장치(예: 공업용 건물 내의 오존처리용)과 이산화질소·황화수소·청산 발생용 전기분해 가스 발생기(**제8543호**)와 오존요법용 기기(**제9019호**)

84.06 - 증기터빈

8406.10 - 선박추진용 터빈

- 그 밖의 터빈

8406.81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8406.82 --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8406.90 - 부분품

이 호에는 팽창된 증기의 운동에너지를 회전익차(翼車 : vane or blade of a wheel)에 작용시켜 구동되는 증기터빈이 해당되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 (1) 로터(rotor) : 곡선의 단면을 갖고 보통 “버켓(bucket)”라고 불리우는 회전날개의 밀집된 열을 갖춘 회전익차가 장치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스테이터(stator) : 로터(rotor)의 회전날개 부분에 증기를 보내기 위한 고정날개나 노즐이 장치된 케이싱(casing)으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회전 부분이 지지되고 회전한다.

“충격(impulse)”터빈에 있어서는 스테이터(stator)에 노즐이 붙어 있어 그 노즐에서 증기가 팽창하고 발생된 고속의 증기를 버켓(bucket)형 회전날개에 붙어준다. “반동(reaction)”터빈에 있어서는 회전날개가 스테이터의 원측(圓側 : round)의 표면 주위에 역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 고정날개의 사이를 회전하며 증기가 스테이터의 날개와 이에 인접한 로터(rotor)의 회전날개에 따라서 축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다.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형이 결합되어 “복합터빈(compound turbine)”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증기의 가속적인 팽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련의 로터(rotor)를 축에 장치한 것(multi-stage turbine)이 흔히 있다.

터빈의 높은 회전속도는 발전기(터보발전기)·기체압축기·통풍기나 원심분리기와 같은 기계의 직결(直結) 회전에 특히 적합하며, 어떤 용도(예: 증기선박이나 증기기관차)에 사용하기 위하여 역전 기어나 감속 기어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분리하여 제시된 역전 기어(reversing gear)와 감속 기어(reduction gea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83호)**.

또한 이 그룹에는 **수증기터빈**도 포함한다. 수증기터빈의 구조와 용도는 위에 설명한 증기터빈과 유사하며 증기대신에 수증기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부분품

터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터빈에 대한 증기의 공급을 부하(負荷)에 맞도록 조절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절장치이다.

이 호에는 조속기(調速機 : governor)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그 밖의 터빈 부분품[예: 로터(rotor)·스테이터(stator)와 그 부분품과 로터·스테이터의 날개]을 분류한다.

84.07 -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 항공기용 엔진

-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407.29 -- 기타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8407.32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8407.33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8407.34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407.90 - 그 밖의 엔진

이 호에는 불꽃점화의 왕복식 내연기관(피스톤식)과 로터리(rotary)식 내연기관(피스톤식) [삼장식(三裝式 : trilobal)의 디스크형의 “피스톤(piston)”을 갖는 Wankel 엔진]을 포함하며 **제95류**의 것을 **제외한다**. 이러한 것에는 자동차용의 엔진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연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적 요소를 갖는다 : 실린더(cylinder), 피스톤(piston), 커넥팅로드(connecting-rod) ·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 · 플라이휠(flywheel) · 흡배기 밸브 등이며 이들 내연기관은 실린더(cylinder) 내에서 연소되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의 팽창력을 이용한다.

이러한 내연기관의 특징은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내에 점화플러그가 부착되어 있고 전동기와 동시에 고 전류를 공급시키기 위한 전기기기(예: 자석발전기 · 코일과 접촉개폐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연료와 공기는 피스톤(piston)의 흡입행정에서 실린더 내에 흡인되기 전에 혼합(예: 기화기 속에서)되나 어떤 것(예: 일부 항공기용 내연기관이나 자동차용 내연기관)은 연료가 인젝터(injector)에 의하여 직접 실린더 헤드 내에 주입된다.

가장 일반적인 연료는 휘발유나 등유 · 알코올 · 수소 · 석탄가스 · 메탄 등도 사용한다.

가스엔진은 대부분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에 의하여 가스가 공급되는데 이것은 때때로 엔진과 일체로 되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독립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가스발생기는 항상 **제8405호**에 분류한다.

*
* *

이들 엔진은 한 개나 수개의 실린더를 갖추고 있다. 수개의 실린더를 갖추고 있는 것은 커넥팅 로드가 단일의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에 연결되어 있고, 실린더는 각각 분리되어 연료가 공급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직방향의 것(직립이나 거꾸로 된 것), 두 개의 대칭적인 열이 경사지게 서로 대향(opposed)하고 있는 것(V형 엔진),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의 반대측에 수평으로 대향하고 있는 것이나 항공기용 내연기관과 같이 방사상의 것이 있다. 로터리 피스톤엔진(Wankel engine)은 앞에서 설명한 보통 피스톤 엔진처럼 일반적인 원리와 똑같이 작동한다. 그렇지만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 대신에 진동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에 의하여 회전되고, 로터리피스톤엔진은 구동축을 직접 회전시키는 특수성형한 하우징(housing) 내에 삼장(三裝 : trilobal)의 디스크를 갖는다.

“피스톤(piston)”은 하우징(housing)(연소실)을 여러 개의 부분(실)으로 나누고, 완전한 회전이 될 때 사행정(四行程) 사이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엔진은 “피스톤(piston)”을 가진 한 개 이상의 하우징을 갖는다.

이 호의 엔진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농업기계용 ; 발전기 · 펌프 · 기체 압축기의 구동용 ; 항공기 · 자동차 · 모터사이클 · 오토사이클 · 트랙터나 보트 추진용이 있다.

이 호의 엔진은 연료분사펌프 · 점화용 장치 · 연료와 오일 저장장치(reservoir) · 방열기 · 오일 냉각기(oil cooler) · 물과 오일이나 연료용 펌프 · 송풍기 · 공기나 오일(oil) 여과기 · 클러치(clutch)나 동력전동(傳動)(power drive) 장치와 시동장치(전기식이나 그 밖의 것)가 장치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또한 변속기어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엔진은 또한 신축성의 샤프트를 갖춘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소형보트의 추진용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이 호의 모터(motor)와 프로펠러와 조타장치로 구성되어 전체가 일체를 이루며 분할할 수 없는 단일 장치이다. 이들 모터는 보트의 선체 밖에 부착되게 제작되어 있으며 분리할 수도 있다. 즉, 쉽게 부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유닛은 부착점에서 회전되는 것이다. 다만, 보트의 뒤편 선체 안쪽에 고착되도록 제작된 모터로서 보트의 바깥쪽 대응 장소에 고착된 조종 프로펠러를 홀딩(holding)하는 블록(block)과 결합되는 것은 아웃보드 모터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차륜을 갖춘 새시 위어나 러너(runner) 위에 엔진을 장착하여 구성하는 이동식 모터도 분류하며, 어느 정도까지 자주(自走 : self-propulsion)할 수 있는 구동장치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그러나 제87류의 차량을 이루는 것은 제외한다).

*
* *

이 호에는 가변형의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으로서 자동차 연료의 옥탄가(octane value)와 세탄가(cetane value)의 측정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90류).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8407.10호

“항공기용 엔진(aircraft engine)”이란 프로펠러[에어스크루(airscrew)]나 로터의 부착용으로 **제작되었거나 개조되어 있는** 엔진을 말한다.

소호 제8407.31호 · 제8407.32호 · 제8407.33호와 제8407.34호

실린더(cylinder)를 갖춘 엔진에 있어서 실린더(cylinder) 용량은 하사점(下死點 : bottom dead centre)과 상사점(上死點 : top dead centre) 사이에 피스톤(piston)이 배기하는 실린더(cylinder) 부분만큼의 용적(volume)과 동일한 것이며, 실린더의 수에 의하여 배가(倍加)된다.

84.08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 선박추진용 엔진

8408.20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8408.90 - 그 밖의 엔진

이 호에는 모든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제95류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연기관은 불꽃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똑같은 기본적 부분[즉, 실린더(cylinder)·피스톤(piston)·커넥팅 로드(connecting-rod)·크랭크샤프트(crank shaft)·플라이 휠(flywheel)·흡배기(吸排氣: inlet and exhaust) 밸브 등]을 갖고 있으나, 다른 점은 공기(또는 때때로 가스와 혼합된 공기)가 먼저 실린더(cylinder)에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급속히 압축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분무된 액체 연료는 연소실로 주입되고 그곳에서 열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연소되어지며, 압축되는 것은 불꽃점화식엔진보다 훨씬 높다.

디젤엔진 이외에 비교적 낮은 압축으로 작동하는 중간 압축점화 세미디젤엔진이 있다. 이러한 형의 엔진을 시동하기 위해서는 실린더헤드를 블로우램프(blow lamp)로 예열해야 하거나 예열 플러그(glow plug)를 사용해야 한다.

압축점화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은 중유(heavy petroleum)나 콜타르유(coal tar oil)·혈암유(shale oil)·식물성 기름(땅콩 기름·피마자유·야자유 등)과 같은 중질(重質: heavy)인 액체연료로 작동된다.

*
* *

이 호의 엔진은 한 개나 수개의 실린더(cylinder)를 가질 수도 있다. 수개의 실린더를 갖고 있는 엔진은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가 단일의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에 연결되어 있고, 실린더는 각각 분리되어 연료가 공급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열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직방향의 것(직립이나 거꾸로 된 것), 두 개의 대칭적인 열이 경사지게 서로 대향(opposed)하고 있는 것(V형엔진)·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의 반대측에 수평으로 대향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호의 엔진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농업기계용 자동차·트랙터·기관차나 선박의 추진용이나 전기발전소용 등이 있다.

이 호의 엔진은 연료분사펌프·점화용 장치·연료나 오일저장장치·방열기·오일냉각기·물이나 오일펌프·송풍기·공기나 오일 여과기·클러치(clutch)나 동력전동(傳動: power drive) 장치·시동장치(전기식이나 그 밖의 것)가 장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한 변속기어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엔진은 또한 신축성이 있는 샤프트(shaft)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차륜을 갖춘 채시 위에나 러너(runner) 위에 엔진을 장착하여 구성하는 이동식 모터(mobile motor)도 분류하며, 어느 정도까지 자주(自走: self-propulsion)할 수 있는 구동장치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그러나 제87류의 차량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 *

제16부
84.08

이 호에는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형의 가변형의 압축모터(compression motor)로서 자동차 연료의 옥탄가(octane value)와 세탄가(cetane value)의 측정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90류)**.

부분품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의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

84.09 -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 항공기 엔진용

- 기타

8409.91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8409.99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흡배기(吸排氣: inlet and exhaust)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피스톤 링(piston ring);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기화기; 연료용 노즐].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인젝션펌프(injection pump)(**제8413호**)

(b) 엔진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와 캠샤프트(cam shaft)(**제8483호**); 기어박스(**제8483호**)

(c) 전기점화나 시동용기기[점화플러그와 예열 플러그(glow plug)를 포함한다](**제8511호**)

84.10 -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0.12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0.13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410.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그 자체로 액체의 이동이나 압축된 액체(예: 물의 흐름이나 낙차 ; 수압 · 유압이나 특수 액압)에 의하여 얻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수력 터빈과 수차(水車)를 분류한다. 이들 엔진(engine)이나 모터(motor)는 휠(wheel)에 붙은 물갈퀴 · 날개나 나선 모양의 기구에 대량의 물을 직접 이동시킴으로써 작동된다.

(A) 수력터빈(hydraulic turbine)

이 수력터빈(hydraulic turbine)은 로터(rotor)의 날개 등에 물의 분사가 직접 부딪치도록 스테이터(stator) 내에 봉입된 로터로 구성된다.

수력터빈은 주로 다음 세 가지 형이 있다.

- (1) **펠톤(pelton)형** : 비교적 수량이 적고 고압의 물을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로터(rotor)는 그 주위에 방사상으로 휠(wheel)이 부착되어 있고 또한 휠에는 다수의 컵이 붙어 있다. 스테이터(stator)는 컵의 접선 방향으로 물의 분사를 유도하는 견고한 케이싱(casing)으로 되어 있다.
- (2) **프란시스(francis)형** : 수량이 풍부한 중간 정도의 압력이나 낮은 압력의 물에 사용한다. 이들은 나선상의 날개를 붙인 일체형으로 주조된 강(鋼)으로 만든 커다란 로터(rotor)와 스테이터(stator)로 구성되는데, 스테이터는 로터의 전 주위를 반경 방향으로 물을 흘러 축 방향으로 배수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각도의 블레이드(blade)를 갖추고 보통 나선형이고 크며, 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카플란(kaplan)형** : 낮은 압력의 공급에 사용한다.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프란시스(francisi)형과 매우 유사한 터빈이며, 스테이터(stator)와 로터(rotor)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앵글블레이드(angle blade)를 갖추고 있다.

수력터빈은 주로 수력발전용 시설에 사용한다.

(B) 수차(water wheel)

이들은 매우 간단한 엔진으로서 휠(wheel) 주위에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평판이나 중공(中空 : hollow)의 물갈퀴가 부착된 대형의 휠로 구성되어 있고 휠 축(axle of the wheel)에는 보통 가속 기어가 부착되어 있다. 여기서 발생한 기계식 동력은 보통 직접 소규모의 공장 · 제재소 · 제분소 등에서 사용한다.

보트용의 패들 휠(paddle-wheel)은 비록 외관상 수차와 유사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87호)**.

유속 측정용의 패들 휠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5호)**.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수력 터빈이나 수차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로터(rotor)·스테이터(stator)·로터나 스테이터용의 블레이드(blade)와 버킷(bucket)·나선 모양 도관용의 케이싱(casing)·부하(負荷 : load)의 변동에 맞추어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에 따라 물의 흐름이나 로터와 스테이터의 가변피치각(variable pitch angle)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조속기(regulator)·조속기용의 밸브니들(valve needle)].

84.11 -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 터보제트

8411.11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8411.12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 터보프로펠러

8411.21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1.22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1.82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부분품

8411.91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8411.99 -- 기타

이 호에는 **터보제트(turbo-jet) · 터보프로펠러(turbo-propeller)**와 **그 밖의 가스터빈**을 포함한다.

이 호의 터빈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이다. 예를 들면, 증기터빈과 같이 보통은 외부 열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터보제트(turbo-jet)

터보 제트(turbo-jet)는 압축기 · 연소장치 · 터빈과 노즐(nozzle)로 구성된다. 이것은 배기관 속에 장치된 수렴관(收斂管 : convergent duct)이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열 가압된 가스는 노즐(nozzle)에 의하여 고속 가스 스트림으로 변환된다. 엔진에서 작용되는 이러한 가스흐름의 반동력이 항공기를 가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공급된다. 간단한 형태의 것은 압축기와 터빈이 단일 축에 설치되어 있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것은 압축기가 두 개의 부분[두 개의 스푼(spool) 압축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속에는 각 부분의 스푼(spool)이 동심 축을 통하여 그 자체의 터빈으로 구동된다. 또 다른 변형된 형태의 것은 보통 압축기의 입구에 도관 팬을 덧붙이고 제 삼의 터빈으로 이들 양쪽을 구동하거나 첫번째 압축기 스푼(spool)에 연결한다. 이 팬은 덕티드 프로펠러(ducted propeller)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팬이 배출한 기체의 대부분은 여분의 추력을 주기 위하여 압축기와 터빈을 우회시켜 배기 분사와 합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version)을 때때로 “바이패스 팬 제트(bypass fan jet)”라고 한다.

소위 “애프터버닝(after-burning)”장치는 아주 단기간에 출력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터보제트 엔진(turbo-jet engine)에 직렬로 장착한 부속 장치이다. 이들 장치는 터보제트(turbo-jet)에서 발생하는 가스 속에 스스로 연료를 공급하고 과잉 산소를 이용하는 장치이다.

(B) 터보프로펠러(turbo-propeller)

이러한 엔진은 터보제트(turbo-jet)와 유사하나, 압축 터빈의 아래쪽에 터빈 하나를 더 갖는 것으로서 피스톤 엔진(piston engine)이 붙은 항공기 내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재래식의 프로펠러(propeller)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뒤편에 있는 터빈을 때로는 “프리터빈(free turbin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압축기와 압축 터빈축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압축 터빈을 나온 가열가압된 가스의 대부분은 터보제트의 경우와 같이 노즐(nozzle) 속에서 팽창되는 대신에 프리터빈에 의하여 축동력으로 변환된다. 어떤 경우에는 프리터빈에서 나오는 가스가 보조 분사력으로 공급되고 프로펠러(propeller)를 조력하기 위하여 노즐 속에서 팽창되는 경우도 있다.

(C) 그 밖의 가스터빈

이 그룹에는 공업용의 가스터빈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항공기용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터보제트(turbo-jet)나 터보프로펠러(turbo-propeller)장치로 적당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1) 단순순환(simple cycle) : 공기를 흡입시켜서 압축기로 압축시키고 연소장치 속에서 가열하여 터빈을 통과시키며 최종에는 대기로 배출되는 것이다.
- (2) 재생순환(regenerative cycle) : 공기를 흡입시켜 압축하고 재생기의 공기관을 통과시킨다. 그 공기는 터빈의 배기(排氣 : exhaust)로 예열시켜서 연소장치를 통과시키면 그곳에서는 연료의 추가로 더욱 더 가열된다. 이들 공기와 가스의 혼합물은 터빈을 통과해서 재생기 옆으로 가열된 가스를 배출시키게 되고 최종에는 대기로 배출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모형이 있다.

- (a) 단일축 가스터빈 유닛(single-shaft gas turbine unit) : 이것은 압축기와 터빈이 단일축에 장치된 것으로 그 터빈은 압축기를 회전시키고 커플링(coupling)에 의하여 회전하는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동형은 전기를 발전하는 것처럼 일정한 정속(定速 : constant speed)운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 (b) 쌍축 가스터빈 유닛(two-shaft gas turbine unit) : 이것은 압축기·연소장치와 콤프레서 터빈(compressor turbine)이 하나의 유닛에 설치되며, 보통 가스발전기(gas generator)로 불린다. 다른 축 위에 있는 제2의 터빈은 가스발전기의 배기장치로부터 나온 가열과 가압된 가스를 받아들인다. 동력터빈(power turbine)이라고 하는 이들 제2의 터빈은 압축기나 펌프와 같이 하나의 구동 유닛에 결합되어 있다. 쌍축 가스터빈은 가스터빈으로부터 나오는 출력의 범위와 회전속도를 부하(負荷 : load)에 따라 변동이 요구되는 경우에 보통 이용된다.

이러한 가스터빈은 선박과 기관차·전기발전·오일과 가스로 구동하는 기계·파이프라인과 석유화학공업에서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연소실이 없는 그 밖의 가스터빈이 포함되고, 이 터빈은 단순히 스테이터(stator)와 로터(rotor)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그 밖의 기계나 장치(예: 가스발전기·디젤엔진·프리피스톤발전기)에 의하여 공급된 가스로부터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또한 압축공기나 그 밖의 압축가스터빈을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gas turbine rotor)·연소실과 제트엔진용 통기공(通氣孔 : vent)·터보 제트엔진(turbo-jet engine)의 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로터 디스크(rotor disc)나 휠(wheel)(핀(fin)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블레이드(blade)와 핀(fin)]·연료공급조절장치·연료노즐(nozzle)].



[소호해설]

소호 제8411.11호와 제8411.12호

추진력(thrust)이란 초당 배기(排氣 : exhaust)되는 질량(mass) 흐름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며, 배기속도(exhaust velocity)와 공기흡입 속도(air inlet velocity)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84.12 -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412.29 -- 기타

-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412.39 -- 기타

8412.80 - 기타

8412.90 - 부분품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과 모터(motor)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수력터빈·수차(水車: water wheel)·터보제트(turbo-jet)·터보 프로펠러(turbo-propeller)나 그 밖의 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turbo-jet)는 제외한다]·압축공기식 동력 엔진과 모터·윈드(wind) 엔진(풍차)·스프링 구동식이나 추(錘)구동식(weight-operated)의 모터 등·수력엔진과 모터·수증기나 그 밖의 증기력 장치를 포함한다.

(A) 터보제트(turbo-jet) 이외의 반동 엔진

(1) 램-제트(ram-jet)

이 엔진은 기계적으로는 간단한 엔진으로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기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터보압축기(turbo-compressor)는 갖추고 있지 않으며 공급되는 공기는 그 자신의 운동 속도에 의하여 밀어 넣어지며, 덕트(duct)의 효과에 의해 연소실 내에서 압축된다. 운동의 원동력은 노즐(nozzle)을 통하여 팽창하는 배기 가스의 반동력에 의하여 주어진다.

(2) 펄스-제트(pulse-jet)

이 엔진은 연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기 노즐이 연속적 분사를 하는 대신에 가스가 맥동(脈動)하는 흐름을 방출한다는 점에서 램-제트와 다르다. 또한 램-제트와는 달리 맥동(脈動: pulsing action)에 의한 공기의 흡입에 따라 정지상태로부터 시동이 가능하게 된다.

펄스-제트(pulse-jet)는 주로 항공기의 보조 이륙용으로 사용한다.

(3) 로켓 엔진(rocket engine)

로켓엔진(rocket engine)은 반동엔진으로서 연소는 외부 공기의 공급과는 관계가 없으며 추진물은 연료와 연소제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여기에 다음의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다. :

- (i) 액체추진체 엔진(liquid propellant engine) : 이들 엔진은 추진체 저장용의 탱크를 한 개 이상 덧붙인 연소실(combustion chamber)로 구성되며, 튜브와 펌프와 분출관의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펌프는 별도의 가스 발생기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어진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이러한 로켓엔진 형태의 중요한 부분은 인젝션-시스템(injection-system)으로 형성된다. 사용하는 연료는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 히드라진 수화물(hydrazine hydrate) 등이 포함되며 연소제(combustion agent)로서는 과산화수소 · 과망간산칼륨 · 액체산소 · 질산 등을 포함한다.
- (ii) 고체추진체 엔진(solid propellant engine) : 이들 엔진은 원통형의 여압실(餘壓室 : cylindrical pressure chamber)과 분출관으로 구성된다. 연소실과 추진체의 공급은 일체로 형성된다. 이러한 엔진 형태에 있어서의 추진체는 연소제(보통 과염소산염 암모늄)와 연료[보통 폴리우레탄(polyurethane)]로 구성된다. 어떤 형식의 것에는 제36류의 추진체 특성을 갖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로켓이 추진장치 **전용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예: 항공기의 보조용 · 이륙용 · 유도미사일 부착용 · 인공위성용이나 우주선 발사체용).

이 그룹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우박방지용 로켓(rocket), 구멍맞출 로켓과 이와 유사한 불꽃형의 로켓(**제3604호**)
- (b) 인공위성 발사체나 우주선 발사체(**제8802호**)
- (c) 동력장치(power-unit)와 결합된 유도미사일(**제9306호**)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제8410호**에 해당하는 터빈(turbine)이나 휠(wheel) **이외의 특정 엔진** : 이들 엔진(engine)은 파도나 바다물결의 힘을 이용하거나[두 개의 반원통형의 블레이드(blade)를 붙인 사보니우스 로터(Savonius rotor)를 이용한다] 조수(潮水 : tide)의 힘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동력을 생산한다.
- (2) **수주기(水柱機 : water column machine)** : 이들 기계는 물의 압력으로 피스톤(piston)을 작동시키는 것인데 물은 축을 돌려주는 실린더(cylinder)의 안에서 움직이는 둘 이상의 피스톤에 작용한다.
- (3) **액압식 실린더(hydraulic cylinder)** : 이들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으로 만든 배럴(barrel)과 피스톤(piston)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그 밖의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 single acting)]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 double acting)]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線 : linear) 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cylinder)는 공작기계 · 건설기계 · 조종장치 등에 사용한다.

- (4) **액압식 밸브 시동기** : 이것은 별도 분리되어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피스톤(piston)을 내장한 금속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이 피스톤은 피스톤로드(piston-rod)에 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된 액체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선(線) 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므로 플러그밸브나 회전 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기가 작동하게 된다.
- (5) **액압식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 : 이것은 피드백(feedback) 제어장치나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한다. 이들 서보 모터(servomotor)는 예를 들면, 항공기에 사용한다.
- (6) **액압식 시스템(hydraulic system)** : 액압동력장치(주로 액압펌프 · 전동기 · 제어밸브와 오일탱크로 구성된다) · 액압실린더와 실린더를 액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pipe)나 호스(hose)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제16부의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 형성하는 단일체(부의 주 총설 참조). 이들 시스템은 예를 들면, 토목 구조물을 작동하는데 사용한다.
- (7) **모터 보트용 “수압식(hydraulic)” 제트엔진** [“하이드로제트(hydrojet)”] : 이들 엔진은 해수나 하수를 취수(取水 : water intake)하여 보트의 하부나 후부에 있는 조절 가능한 관을 통하여 고속으로 분사시키는 강력한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C)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motor)

이들 엔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공기(또는 그 밖의 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피스톤식 증기기관이나 증기터빈과 유사하다. 어떤 것에는 공기압(또는 팽창에너지)을 증가시키기 위한 버너(burner)나 그 밖의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온도의 급격한 강하에 의한 빙결(氷結 : frosting)로부터 실린더(cylinder)를 보호한다.

이들 엔진은 메탄가스의 폭발에 의한 안전성 때문에 탄갱(炭坑)에서 견인용 트랙터와 윈치(winch)에 주로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철도용 기관차 · 항공기 · 잠수함 등에서 내연기관의 시동용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며 어뢰의 추진기관으로도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다음 것도 포함한다.

- (1) 압축공기식 트랜스미션(transmission)용의 베인모터(vane motor) · 기어모터(gear motor) · 축형(軸型 : axial)과 방사형(radical)의 피스톤모터(piston motor)
- (2) 압축공기식 실린더(cylinder) : 이것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鋼)으로 만든 배럴(barrel)과 피스톤(piston)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압축된 공기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단동(單動) : single acting]하거나 양방에 작용[복동(複動 : double acting)]하여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그 압력에 의한 가스의 에너지는 선(線 : linear) 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cylinder)는 공작기계, 건설용 기계, 조타(操舵 : steering)용 기계장치 등에 사용한다.
- (3) 압축공기식 밸브 시동기 : 이것은 따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피스톤(piston)을 내장한 금속 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이 피스톤은 피스톤로드(piston rod)에 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가스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선(線)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므로 플러그밸브(plug valve)나 회전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기가 작동하게 된다.

(D) 풍력엔진(풍차)

이들 그룹에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로터(rotor)의 날개[가변피치식(variable pitch)인 경우가 많다]에 닿는 풍력을 기계적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모든 원동기(풍력엔진이나 풍력터빈)를 포함한다.

보통 상당히 높은 금속으로 만든 탑에 부착된 프로펠러나 로터는 풍향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날개를 구성하는 익판(翼板 : plane)에 수직으로 된 아암(arm)이 달려 있다. 이 원동력은 일반적으로 수직축을 통하여 감속 기어에 의하여 지상의 동력출력축에 전달된다. 어떤 “풍력모터(depression motor)”는 날개가 중공(中空 : hollow blade)으로 되어 있어 익차(翼車)의 회전에 의하여 날개 안에 감압(減壓 : pressure reduction)이 생겨 소형의 반동터빈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밀폐된 도관(conduit)에 의하여 지상으로부터 공기가 흡입된다.

풍력모터(wind motor)는 보통 저출력이며 주로 시골에서 관개(灌溉 : irrigation)용 펌프 · 배수용 펌프나 소형의 발전기의 구동용 장치로서 사용한다.

풍력모터를 발전기에 일체로 결합시킨 발전기[항공기의 후류(後流 : slip stream)로 동작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제8502호)**.

(E) 스프링구동식이나 추구동식(錘驅動式 : weight-operated) 모터 등

이러한 모터에는 시계장치와 같이 감겨진 스프링이 풀릴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구의 것이나 중력(예: 평형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조작되는 기구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탈진기(escapement)가 부착되었거나 부착에 적합한 기구의 것은 **제외한다(제9108호나 제9109호)**.

이 그룹의 모터, 특히 스프링 구동식의 모터는 여러 가지의 기기[뮤지컬박스 · 자동식 턴스피트(turnspit) · 회전식의 쇼윈도 진열물 · 등록기기 · 조각용 공구]의 구동용으로 사용한다.

(F) 보일러를 결합하지 않은 피스톤 엔진

이러한 형태의 엔진에서 기계적 에너지는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piston)의 변위(變位 : displacement)에 의하여 생성되고, 실린더는 보일러에 의해 생성된 증기압과 대기압력(비응축 엔진)이나 응축기의 저압(응축 엔진)간의 압력 차이에 의하여 작동한다. 이러한 피스톤의 왕복이나 진동운동은 커넥팅로드(connecting-rod)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나 플라이휠(flywheel)을 통해서 회전운동으로 변환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것은 증기압력이 피스톤의 한쪽 면에만 작용하는 단동(單動 : single acting)엔진이며, 그 밖의 것[복동(複動 : double acting)엔진]은 양면에 번갈아 작용한다. 더 강력한 엔진에 있어서는 증기가 직경이 점점 커지는 두 개 이상의 실린더 속을 순차로 통과하고, 각개의 피스톤(piston)에 있는 커넥팅로드(connecting-rod)는 하나의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복합이단(二段)이나 삼단 팽창엔진 등]에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관차 엔진과 선박 엔진은 앞에서 설명한 마지막 범주(더욱 강력한 엔진)에 속한다.

(G) 증기원동기(보일러를 결합한 것)

이 그룹에 속하는 엔진은 보일러[일반적으로 연관식(firetube type)]와 때로는 동력 취출 장치로서도 동작되는 한 개나 두 개의 플라이 휠(flywheel)을 갖춘 단식 팽창증기기관이나 복합 피스톤식 증기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종류의 엔진은 주로 저출력이나 중간정도의 출력의 것으로 비교적 영구적인 장치로 되어 있고, 구조가 간단하여 쉽게 해체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motor)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제트엔진용의 연소실(combustion chamber)과 분기공(噴氣孔 : vent) · 풍차의 에어휠(air wheel) · 실린더(cylinder) · 피스톤(piston) · 슬라이드 밸브(slide-valve) · 플라이웨이트(flyweight)형의 조속기(調速機 : governor) · 커넥팅로드(connecting-rod)].

일반적으로 보일러를 결합한 수증기나 그 밖의 증기원동기의 부분품은 보일러(**제8402호**)의 부분품이나 이 호의 증기원동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전동축(transmission shaft)과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는 **제외한다(제8483호)**.

84.13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413.19 -- 기타

8413.2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8413.40 - 콘크리트 펌프

8413.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

-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 펌프

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8413.92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하는 계기나 대금 계산기구를 갖춘 급유펌프와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內燃 : internal combustion)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A) 용적형 왕복펌프(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

이 펌프는 실린더(cylinder)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piston)이나 플런저(plunger)의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단동(單動 : single acting)” 펌프는 피스톤의 단면의 추력이나 흡인만을 이용하는 것이며 ; “복동(複動 : double acting)”식 펌프는 피스톤의 양면의 전후진의 행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간단한 “리프트(lift)”펌프에 있어서는 액체는 다만, 흡인에 의하여 양수(揚水)되어 대기 중에 방출된다. “압상(押上 : force)”펌프는 액체를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거나 압력 용기로 방출하기 위하여 압축행정 외에 흡입행정도 사용한다. 다기통펌프(multi-cylinder pump)는 토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실린더(cylinder)는 선형의 것일 수 있고 별모양의 것일 수도 있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다이어프램펌프(diaphragm pump)** : 이 펌프는 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 등의 진동막(직접이나 액체의 이동에 의하여 작동한다)을 갖추고 있으며 액체는 빨아올리기 위한 피스톤(piston)과 같은 작용을 한다.
- (2) **“오일-쿠션”펌프(oil-cushion pump)** : 배수용·관개용·점성 액체나 산(酸) 등의 흡상용(吸上用 : pumping) 등에 사용하며 퍼올린 액체가 막(膜 : membrane)으로 작용한다.
- (3) **전자기(電磁氣)펌프** : 이 펌프에는 피스톤(piston)의 전후진의 행정은 전자(電磁)작용(자계 내에 있는 영의 진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 (4) 응고되지 않은(젖은) 콘크리트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펌프(콘크리트 펌프)와 같이 **두 개의 피스톤의 흡인이나 압출운동을 이용하는 기계** : 다만, 이 호의 콘크리트 펌프가 함께 영구적으로 부착된 특수용의 차량은 **제외한다(제8705호)**.

(B) 용적형 회전펌프(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이 펌프에 있어서 액체의 흡인과 토출(吐出 : discharge)은 흡인과 압축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캠(cam : lobe)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발생되며, 축상(軸上 : axis)에서 연속적으로 회전된다. 이러한 장치는 펌프 본체의 벽에 하나 이상의 점으로 접촉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체임버(chamber)를 형성하며 그 체임버 속에 액체는 배수된다.

이들은 회전장치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기어펌프(gear pump)** : 액체는 특수한 형체의 기어(gear)의 이(齒)에 의하여 배수된다.
- (2) **베인펌프(vane pump)** : 로터(rotor)는 편심(偏心 : eccentric)으로 회전하는 실린더(cylinder) 모양의 것으로서 반경 방향으로 급격하게 자유로이 움직이는 토출익(吐出翼 : projecting vane)을 갖는다. 그 회전운동은 슬라이딩 베인(sliding vane)이 케이싱(casing) 내벽과의 접촉이 유지되도록 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액체가 배수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또한 베인(vane) 대신에 소형의 신축성이 있는 베인을 갖춘 롤러(roller)나 휠(wheel)을 갖거나 펌프의 본체에 부착된 방사형의 슬라이딩 베인(sliding vane)을 갖는 것으로 편심(偏心)운동과 함께 회전하면서 평활한 로터(rotor) 위에서 마찰되는 펌프를 포함한다.

- (3) **로터리 피스톤 로브형의 펌프(rotary piston lobe type pump)** : 케이싱 속에서 회전되는 두 개의 상호작용 배수장치를 갖는다.
- (4) **나선 펌프(helicoidal pump : screw pump)** : 이들에 있어서 액체는 수개의 나선 모양의 줄(thread)이 서로 교합되고 회전하는 압력에 의하여 펌프 내에서 세로 방향으로 배수된다 [둘 이상의 스크루(screw)를 갖춘 펌프·나선상의 축을 갖춘 펌프·엔드리스 스크루 펌프(endless screw pump)].
- (5) **연동펌프(peristaltic pump)** : 이들은 하우징(housing) 본체의 길이를 따라 흐르는 액체가 함유된 신축성이 있는 관(flexible tube)과 각 끝에 롤러(roller)를 갖춘 로터(rotor)를 갖는다. 롤러는 신축성이 있는 관 위에 압력이 미치게 하고 액체는 회전운동에 의하여 배출된다.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 [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divergent vane : diffuser vane)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압면에 있어서는 다단식 원심펌프를 사용하며 액체는 동일한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impeller)를 통하여 각 단으로 유도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piston)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 기어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중앙난방 순환펌프·채널 임펠러펌프(channel impeller pump)·사이드채널펌프(side channel pump)와 원심임펠러펌프(radial flow impeller pump)를 포함한다.

(D) 그 밖의 펌프

다음의 펌프는 이 그룹에 해당한다.

- (1) **전자기펌프(electro-magnetic pump)** : 이들 펌프는 액체가 전기 전도의 현상에 의하여 순환되기 때문에 가동 부분이 없다. 이들 펌프는 피스톤(piston)의 안팎 운동이 전자기효과에 의하여 얻어지는 용적형 왕복 펌프와 혼동해서는 안되며, 그 기능이 자기유도에 의한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 (2) **이젝터(ejector : 배수 펌프)** : 이러한 형의 펌프에 있어서는 관(tube)으로부터 배출되는 압력에 의한 공기·증기·물 등의 분사된 운동에너지는 처리되는 액체에 대하여 흡인 효과를 유발시킨다. 이들 펌프는 밀폐된 챔버(chamber) 속에 설치된 확산용이나 집중용의 복잡한 파이프 장치로 구성되며 이 챔버에서 파이프 장치가 나온다.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지파드(Giffard)형의 분사기와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용의 분사펌프는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 (3) **에멀전 펌프(emulsion pump : gas lift pump)** : 이들에 있어서 액체는 배출관 내에서 압축가스와 혼합되며, 유제화된(乳劑化 : emulsified) 액체의 밀도가 감소됨으로써 양수(揚水)가 이루어진다. 압축공기를 사용할 경우 펌프는 공기양수 펌프가 되는 것이다.

- (4) 증기나 가스 압력에 의한 펌프는 직접 액체의 표면에서 행하여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가스연소펌프** : 이것은 액체를 양수(揚水 : lift)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료나 가스의 폭발력을 사용한다.
 - (b) **증기 맥동기(蒸氣脈動機 : steam pulsator)(기압 양수기 : pulsometer)** : 펌핑되어 올라 온 액체의 수급은 맥동기의 체임버(chamber)에 들어오는 증기의 변위(displacement)로 이루어지며 흡인은 체임버 속에서 증기가 응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압력강하에 의하여 생기게 된다.
 - (c)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압축공기식 체임버 엘리베이터(Monteju)**
 - (d) **액압식 램(hydraulic ram)** : 공급선 내에서 액체의 흐름을 주기적으로나 갑자기 멈추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유동 액체 기둥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기의 배출관 속에 들어갈 액체만큼을 펌핑하는데 사용한다.

(E) 액체엘리베이터(liquid elevator)

액체엘리베이터(liquid elevator)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버켓(bucket) · 스쿠프(scoop) 등이 부착된 **엘리베이터 휠(wheel)**
- (2) 버켓(bucket) · 스쿠프(scoop) · 고무로 만든 컵 등이 부착된 **체인식이나 케이블식 엘리베이터**
- (3) **밴드엘리베이터(band elevator)** : 이 물품은 섬유나 금속으로 만든 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다세포 모양의 것이나 나선 모양의 것)로 구성되며 물은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모이며 원심력에 의하여 토출(吐出 : ejected)된다.
- (4) **아르키메데스 스크루(Archimedean screw)식의 엘리베이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piston)에 접촉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로드(예: 펌핑로드 · "서커로드(sucker rod)"); 피스톤(piston) · 플런저(plunger) · 베인(vane) ; 캠(cams : lobe) ; 나선 스크루(screw) · 임펠러 휠(impeller wheel) · 확산익(擴散翼 : diffuser vane) ; 버켓(bucket)과 버켓이 부착된 체인(chain) ;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 압력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도자제 펌프[예: 부식성 약액(腐蝕性藥液 : corrosive fluid)용](**제6909호**)
- (b) 수동식의 오일 캔(oil can)과 그리스건(grease gun)(**제8205호**)과 압축공기식 그리스건(grease gun)(**제8467호**)
- (c) **제8422호**에 해당하는 병주입기
- (d) 액체의 분사용·살포용(撒布用 : dispersing)이나 분무용의 기기(**제8424호**)
- (e) 소방차(**제8705호**)



[소호해설]

소호 제8413.11호와 제8413.19호

이 소호에는 액체가 배출되는 양의 용적 조정이 가능한 기기를 갖춘 유닛을 형성하거나 형성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어느 형의 것이든 이러한 펌프만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기가 펌프와 동시에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조절계기는 매우 단순한 것도 있고[예: 눈금이 매겨진 구(球)나 유닛], 반대로 주어진 액체의 전량이 배출되면 펌프가 자동적으로 정지되게 조절되는 더욱더 복잡한 기계장치로 구성되는 것도 있으며[예: 눈금이 매겨진 실린더(cylinder)(측정용 실린더)로 구성되는 배송 펌프로서 한편에는 요구량의 한계를 정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정해 놓은 양이 되었을 때 펌프 모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 것], 본래의 용량제어와 연결시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다[예: 총량 집계용 펌프·선급 펌프(prepayment pump)·가격계산 펌프·샘플링(sampling) 펌프·자동혼합조절 펌프와 자동조제 펌프].

다른 한편, 예를 들면, 측정계기가 펌프의 유동에 의하여 액체가 움직이는 관에 단순히 부착되도록 설계된 경우 이들 두 장치는(펌프와 측정계기) 비록 함께 제시하였을지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들 소호에는 예를 들면, 식품포가계·실험실과 여러 가지 공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측정계기를 갖춘 펌프는 물론 기술린이나 모터(motor)용 연료와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를 포함한다.

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 진공펌프

8414.2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414.30 -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8414.40 -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 팬

8414.51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14.59 -- 기타

8414.6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14.70 -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

8414.80 - 기타

8414.90 - 부분품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A) 펌프와 압축기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압축기는 앞의 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piston)식·회전식·원심식과 이젝터(ejector)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중에는 확산펌프(diffusion pump)(유동성의 기름이나 수은의 확산용 펌프)·분자펌프(molecular pump)와 인트랩먼트 펌프(entrapment pump)[게터 펌프(getter pump)·크리오 펌프(cryo pump)]와 같이 특별히 진공을 만들기 위한 특수형의 것도 있다. 그렇지만 유리로 만든 확산 펌프는 경우에 따라 **제외한다(제70류)**.

기체와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한다. 감압 하에서의 비등(boiling)·증류(distilling)나 증발용 ; 전기램프·전기관·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기체 펌프는 공기를 압력 하에서 펌핑하는 용도(예: 공기식 타이어의 팽창용)가 있다.

액체펌프와는 달리 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저압용이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제외한다)는 수냉식(water-cooled)으로 되어 있거나 압축할 때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air cooling)의 핀이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원심식·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 실린더(cylinder)의 가스압입용(壓入用) ; 화학반응 공정용 ; 냉장고용 등에 사용하며, 저장기에 있는 공기나 그 밖의 가스[급수기계나 급수장치(예: 압축공기식 엔진·압축공기식 착압기·권양기·브레이크·압축공기식 수송관과 잠수함의 배수탱크 등)을 작동시키는데 사용]를 압축하는데 사용된다.

*
* *

이 호에는 또한 가스터빈용 프리 피스톤(free-piston)식 제너레이터(generator)가 포함되며, 이것은 동일 실린더간을 활동하는 수평으로 대향한 두 개의 구동피스톤(driving piston)으로 구성되고, 실린더의 양단은 압축실린더를 형성하기 때문에 옆으로 길게 확대되어 있다. 그 실린더 속을 구동피스톤에 직결된 두 개의 다른 피스톤이 활동(滑動)하면서 공기의 반동(에어쿠션)을 형성한다. 피스톤은 점화된 가스의 폭발에 의하여 좌우로 떨어지며, 그 결과 압축피스톤도 이동한다. 압축 실린더 내에 들어간 공기는 압축피스톤의 복귀행정으로 압축되어 배기가스와 함께 배기밸브를 통하여 밖으로 압출된다. 가열된 가스의 높은 압력이 가스 터빈의 로터(rotor)에 직접 작용하여 그 결과 이 제너레이터(generator)는 가스터빈의 연소실과 압축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제8413호의 펌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되는 기체펌프와 압축기는 모터나 터빈이 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는 주로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 작동하는 고압압축기로 사용한다.

(B) 팬(fan)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은 특히 광산·모든 종류의 건물·사일로(silo)·선박의 환기용 ; 먼지·증기·연기·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 여러 가지 재료(가죽·종이·방직용 섬유·도료 등)의 건조용 ; 노(爐)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

제16부
84.14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에어 히터(air heater)(제7322호)·공기조절기(제8415호)·제진기(除塵機 : dust extractor)(제8421호)·재료처리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19호)·건물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79호)·팬을 내장한 전기식 난방기기(제8516호)

(C)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hood)
(필터를 갖춘 것인지에 여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서 팬을 결합한 요리용 후드(cooker hood)를 포함하며[이들은 가정이나 음식점, 구내 식당(canteen), 병원 등에서 사용한다], 팬을 결합한 실험실용 후드나 산업용 후드도 포함한다.

*
* *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블레이드(blade)·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베인(vane)과 피스톤(piston)].

*
* *

이 호에서도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배기가스 터빈(제8411호)
- (b) 에멀전 펌프(emulsion pump)(제8413호)
- (c) 공기압축식(pneumatic)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제8428호)
- (d)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분류나 선별용의 기계(제8437호)

84.15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8415.2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 기타

8415.81 --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415.82 --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415.83 --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415.90 - 부분품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public hall)·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 [예: 방직용 섬유·종이·담배(tobacco)와 식품공업]에서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기계만을 분류한다.

- (1) 동력구동식의 팬이나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 (2) 공기의 온도(가열기구나 냉각기구나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기구나 건조기구나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과
-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경우

이들의 기계에는 공기의 가습이나 건조를 행하는 기계가 가열이나 냉각을 행하는 기계와 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공기 중의 수분을 응축(凝縮)하여 공기 중의 습도를 변화시키는 단일장치(single unit)를 결합하고 있다. 이 공기 조절기는 이것을 설치한 실내의 공기나, 신선한 외기와 실내공기의 혼합공기[실외의 취입구(damper)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냉각시키는 동시에 제습(냉각코일로 수증기를 응축시켜 제습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응축물을 포집(捕集 : condensate)하는 물통(drip pan)이 비치되어 있다.

기계들은 “벽관통(through-the-wall)” 유닛이라 불리는 일체식 창형이나 벽형과 같이 모든 필요요소들이 둘러싸여 있는 단일유닛 형태일 수 있다. 또한 기계들은 외부 설치를 위한 응축기 유닛과 내부 설치를 위한 증발기와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작동하는 “분리형(split-system)”의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분리형(split-system)”은 도관이 없으며 별개로 떨어져 있는 방과 같이 개개의 지역을 냉각시키기 위해 분리된 증발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호의 공기조절기에는 구조상의 관점으로 보아 공기를 순환시키는 동력구동식 팬과 송풍기(blower)가 **적어도** 다음의 요소와 일체로 결합되어야 한다.

공기의 가열장치(온수·증기나 가열공기가 통하는 배관이나 전기저항 등에 의하여 가열된다)와 공기의 가습장치(일반적으로 물의 확산기로 구성된다)나 공기의 제습장치 ; **또는**

냉각수 코일이나 냉장기계를 구성하는 증발기(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응축에 의하여 습도를 변화시키는 것) ; **또는**

공기의 습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독립된 장치를 갖춘 그 밖의 형태의 냉각기구

어떤 경우에는 제습기(de-humidifier)가 흡수성 물질의 흡습성을 이용하여 행한다.

이 호는 특히,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가 장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해 구내의 난방과 냉방의 이중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냉순환의 경우 반전가능 밸브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열을 방출시키는 실외 코일로 보내게 되며 반면 응축물은 외부공기와 섞이고 그후 압축된 냉각물은 실내 코일로 전해진다(실내 코일은 열을 증발시키고 흡수하여 팬에 의해 실내에 고루 퍼지게 되는 공기를 냉각시킨다). 열순환의 경우 냉·열순환의 전환을 위한 밸브의 이동은 냉각물을 역으로 흐르게 하고 그에 따라 열은 구내 내부에서 방출된다.

공기 조절기는 외부로부터 가열원이나 냉각원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의 기기에는 보통 기름을 침투시킨 여과(濾過)성 물질[방직용 섬유재료·유리섬유·철강이나 구리의 울·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등]을 여러 개 적층한 것으로 구성된 공기정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공기는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먼지 등이 제거된다. 또한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의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거나 자동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공기 중의 습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았지만, 응축에 의하여 습도를 변화시키는 장치는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로서 예를 들면, 앞에 설명한 일체식 유닛과 공기조절이 되어야 할 각 장소(예: 방)마다 각각의 증발기를 사용하는 분리형의 것과 모터 구동식의 송풍기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냉장용 장치가 있다. 밀폐된 체임버[로리(lorry), 트레일러나 컨테이너]의 가열용이나 냉각용 장치도 또한 포함되며, 물품의 격실 바깥쪽에 부착되어 있는 하우징(housing) 내에서는 압축기·응축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테이너(container) 속에는 환풍기와 증발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밀폐된 체임버(chamber)[예: 로리(lorry), 트레일러(trailer)나 컨테이너] 내에서 섭씨 0도 이하의 고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냉장 유닛으로서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일정한 온도 내에서 체임버(chamber) 속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열 장치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장치는 가열 기능이 이 장치의 주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냉장이나 냉동장치로서 **제8418호**에 분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운송 과정에서 썩기 쉬운 물품을 서늘하게 보존하도록 한 것이다.

부분품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indoor unit)와 실외기(outdoor unit)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 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이나 주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7322호에 해당하는 에어히터(air heater)와 온풍분배기(신선하거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b) 비가역식(non-reversible)의 열펌프(제8418호)와 공기조절기용 냉각기(chiller)(제8418호)
- (c) 기기[모터(motor)로 움직이는 팬을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공기의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제8479호·제8516호 등)

○
○ ○

[소호해설]

소호 제8415.10호

이 소호는 창문·벽·천장이나 바닥에 고정 되도록 설계된 공기조절기[“일체형(self-contained)”이나 “분리형(split-system)”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고정(fixed)”이란 크기·중량·물리적 구조(예 : 카스터나 손잡이의 유무)·상호 접속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적으로 다소 영구적인 방법으로 배치되거나 고정시킨 상태를 말한다.

일체식의 공기 조절기는 단일 유닛 형태로서 모든 필요요소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자체로서 완비되어 있다.

분리형의 공기 조절기는 도관이 없으며 별개로 떨어져 있는 방과 같이 개개의 지역을 냉각시키기 위해 분리된 증발기를 사용한다. 실내용 열교환기 유닛은 다양한 장소(예: 벽·창·천장·바닥)에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도관이 있는 중앙 조절시스템(냉각된 공기를 증발기로부터 냉각대상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도관을 사용한다)을 제외한다.

소호 제8415.20호

이 호에는 주로 사람을 태우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용 공기 조절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 운전실이나 사람을 태우는 곳의 공기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호 제8415.90호

이 소호는 별도로 제시된 제8415.10호의 분리형 공기 조절기의 실내기(indoor unit)와 실외기(outdoor unit)를 포함한다. 이 장치들은 전선과 구리관(이 관을 통하여 냉매가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를 순환한다)에 의해 연결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84.16 - 액체연료 · 잘게 부순 고체연료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 · 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8416.2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8416.3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 · 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90 - 부분품

이 호에는 기계식이나 자동식의 여러 가지 노(爐)용 연소장치와 회(灰)와 신더(cinders)의 배출장치를 분류한다.

(A) 노(爐)용 버너

이들은 노(爐) 내에 직접 화염을 붙여 넣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판과 회(灰) 배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爐)용 버너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 있다.

(1) 중유버너(분무기)

이들은 중질 연료를 공기의 흐름 속에 분무하는 것으로서 압축공기에 의하는 것, 고압증기류나 기계식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후자와 같은 형식의 것은 보통 모터(motor) · 펌프와 송풍기와 결합되어 있다].

(2) 미분탄버너(pulverised coal burner)

이들은 대형의 것이 많다. 미분탄(pulverised coal)은 일차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분사 장치에 의하여 노(爐) 내에 분사되도록 한다. 이 버너에는 석탄 컨베이어와 분쇄기와 결합된 것도 있으며 또한 고압이나 저압의 증기를 번갈아 작용시켜 연질탄(soft coal)을 간격적으로 잘게 부수어서 분사시키는 형식의 것도 있다.

(3) 가스버너(gas burner)

강제 통풍식의 고압형의 것과 대기압의 공기를 이용한 저압형의 것이 있다. 공기와 가스는 공기 공급구와 가스 분사구가 동심상(同心狀 : concentric)으로 배열된 관(tube)이나 병렬로 집중된 관(tube)으로 공급된다.

(4) 복합형 버너

기름 · 가스 · 고열량의 석탄이나 그 중의 어느 두 가지를 동시에 연소시키는 것이다.

(B) 기계식 스토커(stoker) · 기계식 불판 · 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이들은 노(爐)에 고체 연료를 공급하거나 화상(火床)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기계장치이다. 기계식 스토커(stoker)와 기계식 불판은 흔히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연소 후의 슬래크(slag)과 회(灰)를 자동 배출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완전자동장치를 구성하는 것도 다른 경우에 기계장치나 자동장치가 비기계식의 장치와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1) 기계식 스토커(stoker)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보통 아르키메데스(Archimedean)형 스크루(screw)식 · 기계형셔블(mechanical shovel)식 · 슬라이딩트레이(sliding tray)식 · 피스톤(piston)식 등의 여러 가지의 공급 장치와 함께 결합된 석탄 홑퍼(hopper)로 구성되며 이들은 수동이나 자동으로 석탄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석탄을 화상(火床)에 공급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때로는 균일한 크기의 석탄을 공급시키기 위한 분쇄기가 설치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중앙난방식 보일러(가정용의 것을 포함한다)용의 기계식 스토커(stoker)를 포함한다.

(2) 기계식 불판(grate)

이들은 석탄을 화상위에 살포하고 균일한 연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석탄이 앞으로 옮겨 지도록 설계된 기기로서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은 캐터필러밴드(caterpillar band)의 원리를 이용한 것과 경사요동단식(oscillating inclined step)이 있다. 이들 불판에는 슬래크이나 회(灰)를 배출하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가 있고 분리된 기계장치에 의하여 배출되는 것도 있으나 이들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버너의 노즐(nozzle) · 기계식 스토커(stoker)용의 추력 피스톤(piston)과 트레이(tray) ; 기계식 불판의 새시 · 연동장치와 그 부분품 · 기계식 불판용의 안내판과 롤(roll)]

*
* *

이 호에는 공업용이나 그 밖의 것으로서 비(非)기계식의 불판봉이나 불판은 **분류하지 않는다**. 특수한 형의 보일러의 전용 부분품으로 설계된 금속으로 만든 불판으로 구성되는 노통(爐筒 : fire-box)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취급되어 **제8402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 기계나 장치에만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비(非)기계식 불판도 해당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예: 가스발생기용의 것-**제8405호**). 반면에 벽돌을 조립할 때 들어가는 범용(汎用)성의 철로 만든 불판봉(fire-bar)과 불판(grate)은 그 형태에 따라 **제7321호** · **제7322호**나 **제7326호**에 각각 분류한다.

84.17 -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8417.2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417.80 - 기타

8417.90 - 부분품

이 호에는 비(非)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 furnace)와 오븐(oven)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爐)실에서나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爐) 실내에서의 고열 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도가니·레토르트(retort)나 선반 위에 놓이는 여러 가지 물품의 열처리[예: 배소(焙燒)·용해·소성(燒成)이나 분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증기 가열식의 오븐도 포함한다.

어떤 형식의 것(예: 터널 오븐)에 있어서는 열처리 대상물이 오븐 속(예: 컨베이어밴드 위에 놓여진 상태로)을 연속적으로 통과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광석이나 황철광 배소용의 오븐과 노(爐)
- (2) 금속 용해로[용선로(cupola)를 포함한다]
- (3) 금속의 담금질(hardening)·소둔(燒鈍: annealing)이나 그 밖의 유사한 열처리용의 오븐과 노(爐)
- (4) 침탄로(浸炭爐: cementation oven)
- (5)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 (6) 코크스로(coke oven)
- (7) 목탄로
- (8) 로터리시멘트(rotary cement) 오븐과 킬른(kiln)과 로터리 석고 오븐
- (9) 유리나 도자공업용에 사용하는 오븐과 노(爐)(터널오븐을 포함한다)
- (10) 법랑소부로(瑛瑯燒付爐: enamel baking oven)
- (11)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생시킨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s)의 용해용이나 열처리용·고온 야금법에 의하여 조사(照射)된 핵연료의 분리용·방사성의 흑연이나 필터의 굽기용·방사성 슬래그(slag)을 포함하는 질그릇이나 유리의 굽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 (12) 화장(火葬)용 노(爐: furnace)
- (13) 쓰레기 등의 소각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소각로와 이와 유사한 기기

이 호에는 내화성(耐火性)이나 도자제의 재료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노(爐)와 오븐, 노(爐)와 오븐의 축조용이나 내장용의 블록(block)·벽돌과 그 밖의 유사한 내화성이나 도자제의 재료는 **제외하며(제69류)**, 금속으로 만든 구조 재료는 원칙적으로 **제15부**에 분류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금속을 주된 재료로 한 노(爐)와 오븐(조립한 것인지 조립하지 않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구성 부분으로서 본체와 함께 제시하는 맞추어 만든 내장 제품이나 그 밖의 필수불가결한 전용의 도자제나 내화성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많은 공업용 노(爐)와 오븐에는 차입하거나 인출하는 장치·문·커버·화상(火床)이나 그 밖의 가동부(可動部)의 조작용이나 노(爐)의 경사용 등의 장치가 결합된다. 이러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의 장치로서 노(爐)나 오븐과 일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본체와 같을 분류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8428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오븐과 노(爐)의 도어(door)·댐퍼(damper)·사이드 실드(side-shield) ; 관측창과 송풍로용의 아치(arch)와 송풍구(tuyère)].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이외의 오븐(**제7321호**)
- (b) **제8419호**에 해당되는 종류의 장치[오일분해(oil-cracking)장치·오토클레이브(autoclave)·증기가열기와 건조장치 등을 포함한다]
- (c) 전로(轉爐 : converter)(**제8454호**)

**84.18 -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8418.10 - 일체형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 문, 서랍이나 그 결합물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가정형 냉장고
- 8418.21 -- 압축식
- 8418.29 -- 기타
- 8418.30 -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418.40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418.50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 8418.61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8418.69 -- 기타
 - 부분품
- 8418.91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 8418.99 -- 기타

(I)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ammonia)·할로젠(halogen)화된 탄화수소]·휘발성 물체·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한제(寒劑)(freezing-salt)사용형의 냉동고(제8210호나 제8419호)
- (b) 간단한 열교환식의 유수(流水 : water flow) 냉각기(제8419호 해설 참조)
- (c) 냉장기구를 갖추도록 설계되지 않은 얼음상자·단열상자 등(일반적으로 제9403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냉장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A) 압축형 냉장고(compression type refrigerator)

이들의 주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압축기(compressor)** : 팽창된 가스를 증발기로부터 받아서 가압 하에 응축기로 보내준다.
- (2) **응축기(condenser)**나 액화기(liquefier) : 이곳에서 가스가 냉각되고 액화된다.
- (3) **증발기**(적극적으로 냉각이 이루어지는 기구) : 이것은 배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액화된 냉매는 팽창 밸브로부터 방출되어 주위의 공기로부터, 또한 대형의 냉각장치의 경우에는 증발기의 나선관의 주위를 순환하는 염수(brine)나 염화칼슘용액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급속하게 증발(팽창)한다.

선박용의 것에 있어서는 냉매[물이나 염수(brine)]가 순환하는 회로에 압축기와 응축기가 없으나 증기응축기와 함께 동작하는 이젝터(ejector) 펌프에 의하여 발생하는 진공에 의하여 냉매의 증발이 행하여진다. 증발응축기는 발생한 증기의 응축과 처리를 행하나 증기계통에 되돌려 보내지는 못한다.

(B) 흡수형 냉장고(absorption type refrigerator)

이 형의 냉장고에서는 압축기 대신으로 “가스발생기(generator)”를 사용하며 가스발생기 내에서 고농도의 암모니아 용액이 가열(가스·오일이나 전열기에 의하여)되어 배출된 암모니아 가스는 가압하에서 응축기에 축적된다. 응축 사이클은 응축식의 경우와 같이 증발기에 있어서의 팽창과 냉각으로 연속된다. 이 경우에 팽창된 가스는 흡수기 중의 희박한 용액에 재용해되고 그 용액은 흡수기로부터 간단한 압력 효과나 펌프에 의하여 가스발생기에 보내진다. 또한 어떤 형식의 것에 있어서는 가스발생기 자체가 가열을 중지한 냉각기간 중에 흡수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어떤 건조형의 것에 있어서는 암모니아가스가 액체 대신에 고체[예: 염화칼슘이나 실리카겔(silica-gel)]로 흡수된다.

*
* *

앞에서 설명한 기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1) 압축기(모터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축기를 동상(同床)에 부착시킨 기기(증발기를 완전히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흡수장치를 갖춘 기기(이러한 기기는 보통 가정형 냉장고나 그 밖의 냉장용 캐비닛에 결합되어 사용한다). “액체냉각유닛(liquid cooling units)”으로 알려진 어떤 압축식 냉각기는 증발기와 냉각시킬 액체를 옮기는 관(tubing)이 내장된 압축기와 열교환기가 동상(同床)에(응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결합된다. 이 후자의 기계에는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하는 냉각기(chiller)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한다.
- (2) 냉장기기식이나 냉장기구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캐비닛, 그 밖의 가구와 장치(교반기 · 믹서형과 같은 부속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장치에는 가정용 냉장고 · 냉장용의 쇼케이스와 카운터 · 아이스크림용이나 냉동식품용의 저장용기 · 냉수용이나 음료용의 서비스기 · 우유냉각용 통 · 맥주냉각기 ·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을 포함한다.
- (3) 대형의 냉동기계설비에 있어서는 구성기기가 동상(同床)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일체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그 방법에는 직접 팽창[증발기가 “냉각이용(cold-using)” 장치 속에 결합되어 있다]이나 간접 냉각 [냉동기에서 냉각매체(염수)를 “냉각이용(cold-using)” 장치에 관(管)을 통하여 이동시켜 냉각을 한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계설비는 냉동저장 플랜트나 제조공장[빙괴(冰塊 : block ice) 제조 · 식품의 급속 냉동 · 초콜릿 제조에 있어서의 급속 냉각 · 석유 정제에 있어서의 파라핀왁스(paraffin wax)의 분리 · 화학공업 등]에서 사용한다.

이와 같은 기계 설비에서 발생된 저온을 이용하는데 불가결한 부속기기는 이러한 기계 설비의 다른 구성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부속기기에는 칸막이형이나 터널형의 급속냉각기 · 과자용이나 초콜릿용 등의 냉각테이블을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밀실 중에서 액화가스를 기화시켜 냉동을 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보통 한 개 이상의 액화가스탱크 · 온도조절기 · 전자기밸브 · 제어반 · 전기스위치와 구멍을 뚫은 증발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구성기기가 **같이 제시될 때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II) 열펌프(heat pump)

열펌프(heat pump)는 적절한 열원(주로 지하수나 지표수 · 토양이나 공기)으로부터 열을 빼내어 보조 에너지원(예: 가스나 전기)을 가하여 더욱 더 뜨거운 열원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열전달 유체(流體)(heat-transfer fluid)는 일반적으로 열을 열원에서 열펌프로, 열펌프에서 처리된 열매체로 전달하는데 사용한다.

열펌프에는 **압축형(compression)의 것**과 **흡수형(absorption)의 것** 두 가지 형이 있다.

압축형 열펌프는 주로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 (1) 증발기(evaporator) : 이것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서 열전달 유체(流體)(heat-transfer fluid)에 전달하는 것이며 ;
- (2) 압축기(compressor) : 이것은 기계적 방법으로 증발기로부터 기화된 유체(流體)(vaporised fluid)를 빼내어 응축기에 압력을 가해서 전달하는 것이고 ;
- (3) 응축기(condenser) : 이것은 그 속에서 증기를 액화하는 열교환기로서 열을 처리된 열매체에 넘겨준다 ;

흡수형 열펌프에 있어서 압축기는 물과 냉매가 들어 있고 버너(burner)가 결합되는 보일러로 대체된다.

열펌프는 보통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되는 것으로, 그 첫째는 열의 최초 열원이고, 둘째는 온도가 변경되는 열매체이다. 이들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유형이 있다.

- (i) 공기/물이나 공기/공기 열펌프 : 이것은 대기로부터 주위 열을 빼내어 그것을 온수 온풍의 형태로 복구시키는 것이다.
- (ii) 물/물이나 물/공기 열펌프 : 이것은 지하수원이나 대량의 지표수로부터 열을 얻는 것이다.
- (iii) 토양/물이나 토양/공기 열펌프 : 이들에 있어서 열은 땅속에 묻힌 관(tube) 장치에 의하여 얻어진다.

열펌프는 여러 가지의 회로요소가 하나의 유닛을 형성하는 단일항목의 기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닛은 단일체 형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또한 수 개의 독립된 물품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열펌프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장 내의 시설용으로 할 경우 증발기가 없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들은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불완전물품으로 간주하며 이 호에 분류한다.

열펌프는 주로 빌딩의 난방용이나 가정의 온수 공급용으로 사용한다. 비가역(非可逆 : non-reversible)의 열펌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모터(motor) 구동용 팬과 온도와 습도의 양쪽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구성되는 가역(可逆 : reversible) 열펌프는 **제외한다**. 이러한 것들은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로 간주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응축기·흡수기·증발기·가스발생기·캐비닛(cabinet)·카운터(counter)와 그 밖의 냉장고용 가구와 앞에서 설명한 (2)항에서 언급한 종류의 기기로서 완전한 냉장유닛이나 증발기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명백하게 그러한 기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등이 있다.

제16부
84.18

압축기는 냉장고용이나 냉동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414호**에 분류한다. 전용이 아닌 (non-specialised) 부분품(예: 튜브와 탱크)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냉장유닛이나 냉장유닛 증발기를 결합하고 있는 공기조절기(**제8415호**)
- (b) 기체의 액화장치[예: 린데(Linde) 장치](**제8419호**)

84.19 -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 가스식인 즉시식 물 가열기

8419.12 -- 태양열 물 가열기

8419.19 -- 기타

8419.20 -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 건조기

8419.33 -- 동결건조기·냉동건조 장치와 분무건조기

8419.34 -- 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8419.35 -- 기타(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으로 한정한다)

8419.39 -- 기타

8419.40 - 증류기나 정류기

8419.50 - 열교환기

8419.60 - 기체 액화용 기기

- 그 밖의 기기

8419.81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419.89 -- 기타

8419.90 - 부분품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제7321호**의 가정용 스토브(stove)·화상·조리기 등

(b) **제7322호**의 전기가열식이 아닌 공기가열기와 온풍 배분기

(c) **제7418호**의 가정용 조리기나 가열기

(d) “이중온도(dual temperature)” 방법을 쓰는 동위원소 분리기와 동위원소 교환기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분별증류용 기기(예: 중수의 제조)와 정류용의 기기(**제8401호**)

(e)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제8402호**)와 이들의 부속기기(**제8404호**)

(f) **제8403호**의 중앙난방용의 보일러

- (g)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 : furnace)와 오븐[고온야금(冶金)법에 의하여 조사(照射)된 핵연료 분리용의 것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포함한다](각 경우에 따라 **제8417호**나 **제8514호**)
- (h) **제8418호**의 냉장기계와 열펌프
- (ij) 발아용 설비·부란기와 양육기(**제8436호**)
- (k) 곡물 가습기(**제8437호**)
- (l) 당즙추출용의 침출기(diffusing apparatus)(**제8438호**)
- (m) 방직용 섬유의 실·직물이나 직물의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류[예: 실유연제와 털 그스리는 기계(singeing machine)](**제8451호**)
- (n)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화학기상증착기(**제8486호**)
- (o) 전자유도식(induction)이나 유전 손실(dielectric loss)식에 의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재료가열기(마이크로 웨이브식의 기기를 포함한다)(**제8514호**)
- (p)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형태로서 공업용이나 상업용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제8514호**)
- (q) 액체·반유동체성 물질(고체 물질은 제외한다)이나 기체 가열용의 수중 히터로서 영구히 결합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물만을 가열하도록 설계된 통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수중 히터(**제8516호**)
- (r) **제8516호**의 전기식 토양 가열기·전기식 실내 가열기와 가정용 전열기기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 [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가열이나 냉각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나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차적인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는 **제외한다**. 예: 비스킷 등의 초콜릿 피복(被覆)기와 콘체(conche)(**제8438호**)·세탁기(**제8450호**나 **제8451호**)·역청질의 노면(路面)재료를 뿌리고 다지는 기계(**제8479호**)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류와 설비는 기계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열원(석탄·오일·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하여 가열되거나 전기 가열식 으로서 **제8516호**에 분류하는 즉시식 물가열기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 호에는 본 해설 뒷 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non-domestic)기기 **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기계와 설비를 분류한다.

(I)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여러 가지의 가열·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 :

- (1) 간접가열용이나 간접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으로서, 이중벽이나 이중저부(bottom)를 갖추고 있는 것. 그러나 이중벽이나 이중저부를 갖춘 용기로서 가열이나 냉각의 매체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예: 열 절연용기)은 제14부나 제15부(예: 제7309호)에 해당되고 또한 냉각기계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것(직접 냉각에 의한 것)은 제8418호에 분류한다.
- (2) 단중벽(單重壁 : single wall)의 용기와 통 등으로서 직접 가열식(천공된 증기용 코일에 의하여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장치를 갖춘 것 중 보통 가정용(일반적으로 제7321호) 이외의 것. 일반적으로 산업용의 것은 거대규모와 구조의 견고성, 여과기나 응축용 돔·교반기나 경사장치와 같은 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용기는 단중벽이나 이중벽이든 간에 때로는 고압 하[예: 오토 클레이브(auto clamp)]에서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등에서는 감압 하에서 조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직접이나 간접의 가열수단을 갖추지 않은 용기는 명백하게 다른 호에 열거된 기계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79호에 분류한다.

저온 살균기를 포함하는 가열용기의 그룹은 때로는 감압 하에서 작동되며 식품이나 음료제품(밀크·버터·포도주·맥주 등)으로부터 소정의 온도로 유해한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엮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이러한 장치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 (i)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 액체는 고리 사이로 흐르고 다른 쪽 액체는 중심관으로 흐른다.
- (ii) 튜브 내장 체임버(chamber)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 속에 내장되어 있다.

또는 (iii) 서로 연결되고 있는 좁은 체임버(chamber)의 평행 열이 조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

이 호 해설의 첫절[제외조항(e)]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호에는 증기발생용 보일러의 보조장치(제8404호)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열교환식의 것(예: 증기응축기·공기에열기와 절약기)이 많다.

다음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것에서 언급한 규정을 제외하고 본 해설 (I)에 포함되는 기계와 설비를 예시한 것이다.

- (1) 한제(freezing-salt)사용형의 냉동고(제8210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 (2) 질소나 그 밖의 가스 액화용 응축기
- (3) 밀크의 살균·농축·냉각장치 등(냉각장치가 붙은 저장용기를 포함한다)
- (4) 치즈 공업에서 사용하는 가공과 숙성용 통
- (5) 과즙·포도주 등의 농축·냉각장치
- (6) 농업용의 시설(예: 사료용 감자 등의 조리용 가압솥 ; 꿀벌집의 재용해용 온탕조로서 가압 스크루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 (7) 냉각탑(예: 제분공업용의 것)
- (8) 식료품의 조리·조제나 저장용의 가압솥·증기가열·끓임(boiling)·조리·튀김용 등의 장치 [예: 햄용의 조리 체스트(chest) ; 어류의 튀김기 ; 과실이나 채소 등의 조리기와 박피용 가압솥 ; 통조림업과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과 냉각장치 ; 잼 끓이는 그릇 ; 과자 끓이는 그릇]
- (9) 가열장치를 갖춘 침지조(侵漬槽 : macerating vessel)와 매싱조(mashing vat) ; 흙을 끓이기 위한 용기 ; 맥주살균기와 냉각기 등
- (10) 청정용기·액즙농축장치·진공 끓임 팬·탄산법(carbonation)조·아유산(sulphiting)조·정제용조 등으로서 제당공업에서 사용하는 것
사탕무로부터 액즙을 추출하기 위한 확산장치(확산용기와 “가온기(加溫機 : calorisorator)”가 함께 제시하는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38호의 해설 (V) (B) (3) 참조]. 다만, “가온기(calorisorator)”만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 (11) 수지의 용해용·지방의 비누화용의 가압 솥 ; 마가린 응고용의 탱크로서 냉각회전원통 상에서 마가린을 응고하는 구조의 것
- (12) 목재펄프의 화학처리와 목재의 가수분해에 사용하는 용기·조(槽)·가압솥 등
- (13) 염료조제용의 조(槽 : vat) 등
- (14) 고무경화용 가압솥
- (15) 금속의 산세척(pickling)·탈유용(de-greasing)의 조(槽) 등

- (16) 침지(浸漬) 코일(*immersion coil*) : 플라스틱 관(*tube*)을 병렬 꼬임식으로 배열하여 조립한 물품으로서 각 끝 부분은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고 벌집모양의 구조에 결입(*sealed into*)되어 있다. 수조 속에 이 장치를 넣으면 관(*tube*) 속에 순환 중이던 액체나 증기로 인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거나 가열이나 냉각작용을 하게 된다.
-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 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와 밀크끓이기·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 ; 증기가열조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닛 등과 ; 농지(濃脂 : *deep-fat*) 튀김기]
- (18) 지불기능이 없는 자동 온냉음료 지급기계

위의 여러 가지의 기기는 주로 산업용의 것이지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태양열 온수기를 포함한다)는 가정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제8516호).

*
* *

이 호에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가정용 스티머(*steamer*)·가압식 조리기와 커피여과기는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15부).

(II) 증류용·정류용 설비

도자제의 것(제6909호)·유리로 만든 것(제7017호와 제7020호)을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물질(액체나 고체)의 증류용으로 설계된 모든 설비를 포함한다.

(A) 간단한 증류장치

이 장치는 액체를 증류기화하는 용기(*retort*)나 증류기 본체와 그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응축하는 냉각장치와 유출액을 수집하는 용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예: 간단한 배취식 증류기(*simple batch still*)로서 직접 가열되거나 내장된 증기코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즉, 증류기 본체는 액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보통 증기튜브나 코일에 의하여 가열된다. 연속적 증류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증류기가 직접으로나 증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가열되는 동안에 다른 증류기는 증류액을 공급하고 앞의 증류기로부터의 증류증기에 의하여 가열된다.

(B) 분류기(fractionating plant)나 정류기(rectifying plant)

이 장치는 수직으로 된 분류(分溜)탑을 갖춘 보다 복잡한 연속적 설비로서 복잡한 혼합물이라 할지라도 한 공정으로 분류(分溜)된다. 분류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버블링 캡(bubbling cap)과 다운플로우 튜브(down-flow tube)를 갖춘 판을 상호 결합시킨 섹션으로 갈라져 있다. 따라서 한 섹션에서 발생된 증기는 위에 있는 섹션에 보내져 그곳에서 증기의 응축된 부분과 직접 접촉한다. 그리고 증기가 탑(塔) 내(內)에서 상승할 때 온도가 하강되기 때문에 끓는점(boiling point)과 일치되는 각기 다른 레벨(level)에서 증기 성분은 분리된다.

고형물(석탄·갈탄·목재 등)의 건류 설비도 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료는 제8417호에 분류하는 노(爐) 내에서 가열된다. 이 호에는 노(爐) 내에서 발생된 휘발성 물질의 분리에 사용하는 응축·정류(精溜)장치만을 분류한다.

증류장치 등의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었거나(예: 스테인리스강·구리·니켈) 유리나 내화성 물질로 라이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감압이나 고압 하에서의 증류장치는 진공 펌프나 압축기를 갖춘 경우도 있다.

배치식 증류기(batch still)는 주로 정유·리큐르(liqueur) 등의 조제에 사용한다. 연속증류기(단일증류나 분별증류)는 여러 가지 산업에 사용한다(예: 공업용 알코올·지방산·액체공기·합성연료와 화학제품의 증류; 원유의 정류; 목재·석탄·혈암·갈탄·콜타르 등의 건류(乾溜)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분류(分溜)작용에 의하여 조사(照射)된 연료용이나 방사물 가공용의 분리기도 포함한다.

(III) 증발기(evaporating plant)나 건조기(drying plant)

이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 상태에서(*in vacuo*)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비교적 저온에서 증발이나 건조하는 장치만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제8417호의 공업용 노(爐)나 오븐과 같이 보다 고온을 발생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산업용 장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증발기(evaporator) : 증기 코일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가열되는 넓은 표면을 갖는 용기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때로는 발생된 증기를 제거하는 배기기(排氣器: evacuator)를 갖추고 있다. 증발기에는 단순 효용의 것과 다중(多重) 효용의 것이 있으나 다중 효용기는 조작과 구조에 있어서 다중 효용증류기와 유사하나 다만, 응축된 증기의 재생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

- (B) **실험실용의 저온탈수 건조기와 동결 건조기** : 항독소·박테리아·바이러스·혈장과 혈청 등의 생물표본을 탈수에 의하여 안정화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표본은 일차 동결시킨 다음에 저압 하에서 서서히 재가열함으로써 물품이 남고 얼음은 승화한다.
- (C) **터널형 건조기(tunnel dryer)** : 이들은 일차적으로 컨베이어 장치를 갖춘 대형의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베이어 위에 올려진 물품은 열기와 부딪치도록 알맞은 속도로 체임버를 통하여 운반된다. 이 건조기는 특히/ 도자공업 ; 유리공업 ; 식품공업[어류·육(肉) 등의 훈제용의 장치를 결합시킨 것을 포함한다] ; 목재·건축 등의 건조용에 사용한다.
- (D) **회전건조기(rotary dryer)** : 내부나 **외부로부터** 가열되는 회전실린더(cylinder)나 드럼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사용한다(제지·감자플레이크의 조제 등).
- (E) **플레이트형 건조기(plate dryer)** : 수평으로 길게 천공된 여러 개의 판이나 선반을 갖춘 금속으로 만든 체임버로 구성되며 때로는 내부가열식의 것도 있다. 격자(格子)가 붙은 중앙 회전축이 열판 위에 재료를 살포하면 구멍을 통하여 차례로 다음 판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 형의 건조기는 맥아(麥芽 : malted barely)의 처리에 사용한다.
- (F) **분무식 건조기(spray dryer)** : 증발기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고속도로 회전하는 수평 원판을 내장하는 금속으로 만든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조기에는 가열기와 팬이 결합되어 있으며 액체를 열풍의 흐름 속에 회전원판에 의하여 원심적(遠心的)으로 분무와 같이 비산(disperse)시킨다. 이렇게 해서 액체는 순간적으로 가루 상태로 건조되며 ; 다른 형에 있어서는 액체가 분무상으로 체임버 속으로 분사되나 열풍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분사된다. 이러한 형은 특히 분유 제조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핵분열성 용액(fissile solution)이나 방사성 용액(radioactive solution)의 증발용이나 핵분열성이나 방사성 제품의 건조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방사성 침전물의 건조용 원심분리기(**제8421호**)
- (b)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건조용 기계(**제8422호**)
- (c) 방직용 섬유질 실·직물이나 직물 제품의 전용 건조기(**제8451호**)

(IV) 배소(焙燒) 장치(roasting plant)

이 장치는 회전하는 원통형이나 구(求)상의 용기로 구성되며 배소(焙燒)할 물품(예: 커피두 · 코코아두 · 곡물이나 핵과 등)을 뜨거워진 용기의 벽에 닿게 하거나, 가열매체(예: 가스나 오일 버너나 코크스 화염)에서 나오는 강한 가열공기를 직접 쏘이게 함으로써 열을 조절하도록 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보통 물품을 고르게 배소(焙燒)하고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속도의 회전을 유지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또한 가열가스가 공급되는 체임버 내에 구멍이 뚫린 경사식이나 회전식의 선반(shelf)을 내장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제8417호**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와 오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V) 증자 장치(steaming plant)

이 장치는 밀폐식 용기의 형태(이 호의 해설에서 이미 설명된 일반적인 형)로 될 수도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가 습기가 있는 열(예: 가압 증기나 재료 자체에서 발생된 증기에 의한다)에 의해서 쪄어질 수 있다.

이 장치는 여러 가지 물품의 제조 공정에 사용한다[예: 채소나 동물 추출물의 조제 ; 식품공업전반 ; 증기를 이용하는 탈지(de-greasing) · 청정 공정]. 또 다른 형태의 것은 대상 재료에 대하여 다소 장시간의 증기 처리를 해주기 위한 보다 큰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장치는 예를 들면, 대량으로 방직용 섬유를 조절하거나 목재의 증기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직물의 상태조절용 기계, 이러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증기 처리용의 기계는 **제외한다(제8451호)**.

(VI) 멸균 장치(sterilising apparatus)

이것은 증기나 끓는 물(때로는 가열 공기)에 의하여 가열되는 용기나 체임버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살균될 제품이나 재료는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데 충분한 고온 하에서 제품이나 재료 자체의 조직이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요기간 동안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많은 액체용 멸균장치는 앞 (I)에서 설명된 것(예: 저온 살균기)과 유사하다. 어떤 대형의 멸균장치는 컨베이어를 갖추고 있어 물품을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가열매체 속을 이동시킨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치의 일부로서 결합되어 있는 냉각장치를 계속하여 통과시키는 수도 있다.

이 그룹에는 공업용[예: 밀크 · 포도주 · 과일주스 · 원면(cotton wool)] 뿐만 아니라 수술실 등에 설치하는 살균기도 포함한다.

(VII) 공기액화장치와 실험실용 특수장치

이 호에는 **린데(Linde)식이나 클로오드(Claude)식의 공기액화장치**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실험실용 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가압솥·증류·살균과 증기가열기·건조기 등)을 분류한다. 다만, **제9023호**의 전시용 모형과 **제90류**에 열거된 측정·검정용 등의 기기는 **제외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증류탑(塔)의 특정 부분품으로서, 예를 들면, 레토르트(retort)·버블 캡(bubble cap)과 링·플레이트와 특정의 튜브 엘리먼트(tube element) ; 배소(焙燒) 장치나 건조기 등에 사용하는 회전원판이나 드럼 등을 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관(tube·pipe)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

84.2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 부분품

8420.91 -- 실린더

8420.99 -- 기타

이 호에는 **제8455호·제8462호나 제8463호**에 해당하는 금속가공기계나 금속압연기계와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를 **제외**한 모든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와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를 분류하며, 특정 공업에 전용되도록 제작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 실린더(cylinder)나 롤러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마찰·열과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

- (1) 가소 상태(plastic condition) 하에서 롤러에 보내진 재료(제빵·제과·비스킷 제조용의 반죽덩어리·초콜릿·고무 등을 포함한다)를 회전하여 시트(sheet) 모양으로 하는 것
- (2) 롤러 사이를 통과한 판 모양 재료(금속과 유리는 **제외한다**)에 어떠한 표면 효과를 나타내는 것[예: 평활화(아이언시공(ironing)을 포함한다)·광택화·글레이징(glazing)·연마·형압(embossing)·사목완성가공 등]
- (3) 완성가공 도장이나 표면 도장
- (4) 직물을 접착하는 것

이 종류의 기계는 광범위한 공업에 사용한다[예: 종이·방직용 섬유·가죽·리놀륨(linoleum)·플라스틱과 고무 제조업].

어떤 종류의 공업에서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에 대하여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예: 세탁소에서 쓰는 다림질기(ironing machine)·직물공업용의 완성가공 망글(mangle)·제지공업용의 수퍼캘린더기] 그들이 캘린더기로 불리는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는 때로는 그 밖의 기계의 보조 장치로 구성된다(예: 제지기계). 이 캘린더기가 이들 그 밖의 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 이 분류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을 따른다.

한편 단순히 침적조(impregnating bath)·롤러·권취(reeling)장치나 절단장치와 같은 보조 장치를 갖춘 캘린더기는 이 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가정용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캘린더형의 평활화용 기계(smoothing machine)나 다림질기(ironing machine)를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로울기(rolling machine)에 전용되는 것이 명백한 **실린더(cylinder)**는 이 호에 포함한다. 이러한 실린더는 금속·목재나 그 밖의 적절한 재료[예: 압착지(compressed paper)]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길이와 직경의 것이 있고 중공(中空)이 아닌 것도 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롤의 표면이 연마된 것·물결 모양으로 된 것·나뭇잎 모양으로 된 것이나 모양이 조각된 것 등이 있다. 또한 다른 재료(예: 가죽·방직용 섬유·직물의 직물이나 고무)에 의하여 피복된 것도 있다. 금속으로 만든 실린더는 보통 증기·가스 등에 의하여 내부로부터 가열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정한 캘린더기용의 실린더 세트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실린더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
* *

이 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로울기(rolling machine)와 다소 유사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

- (a) 방직용 섬유·종이 등의 실린더(cylinder)식 건조기(제8419호나 제8451호)
- (b) 포도주·사과술 제조용 프레스(제8435호)
- (c) 파쇄용이나 마쇄용의 로울기(rolling machine)(제8436호·제8474호나 제8479호)
- (d) 제분용의 실린더(cylinder)기(제8437호)
- (e) 세탁용의 쥐어짜기용 기기(제8451호)
- (f) 금속압연기(제8455호)
- (g) 금속판을 편평하게 펴는 기계(제8462호)와 금속판의 압형기(제8463호)
- (h) 압연법에 의한 판유리제조기와 유리가공용의 캘린더(제8475호)

84.2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 크림분리기

8421.12 -- 의류 탈수기

8421.19 -- 기타

-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8421.29 -- 기타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8421.32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한다)

8421.39 -- 기타

- 부분품

8421.9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421.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나 일부를 분리하거나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
- (II) 액체용이나 기체용의 여과나 청정 기계류나 장치[다만, 예를 들어 깔때기여과장치 · 밀크 여과기 · 페인트 여과용 여과기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73류**)

(I)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원심분리기는 천공판·드럼·바스켓이나 보울(bowl)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통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고정식 컬렉터(stationary collector) 속을 고속으로 회전하며 이때에 뛰어나온 물질은 원심력에 의하여 컬렉터의 벽을 향하여 발사된다. 어떤 형에 있어서는 비중이 서로 다른 물질이 일련의 독립형 분리 원추에 의하여 다른 수위에서 모여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형은 고체 상태의 성분이 천공 회전드럼·바스켓 등 속에 보존되고 액체 상태의 성분은 배제되는 것도 있다. 이 후자의 형의 기계는 액체를 어떤 물질 중에 완전히 침수시키는데에도 사용한다(예: 염색이나 청정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세탁용·염색가공용·펄프공장용·제분공장용 등의 원심건조기
- (2) 설탕정제용 원심분리기
- (3) 크림 세퍼레이터(separator)와 밀크의 원심청정기
- (4) 오일·포도주·알코올 등의 원심청정기
- (5) 석유제품의 원심탈수기나 원심탈납기
- (6) 포도주·탈로우(tallow)·전분 등의 원심탈수기
- (7) 면화약제조용의 원심탈초산기
- (8) 효모 배양용의 원심분리기
- (9) 화학공업용 원심분리기(예: 항생물질용 고속 추출기)
- (10) 주로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원심분리기(경사법(decantation)을 쓰기 위하여 액체를 적층 상태로 분리하는 것)
- (11) 혈액에서 혈장(plasma)을 분리하는 원심분리기
- (12) 방사성 침전물의 건조용 원심분리기
- (13) 원심꿀추출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원심분리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플레이트(plate)·드럼(drum)·바스켓(basket)·볼(bowl)과 컬렉터(collector)].

*
* *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이 원심력의 원리에 의하여 조작되는 특정의 다른 형태의 기계는 **제외한다**.

- (a)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용의 “가스(gas)”원심분리기라 부르는 특수 원심분리기(**제8401호**)
- (b) 액체용의 원심펌프(**제8413호**)
- (c) 원심식 공기펌프와 송풍기(**제8414호**)
- (d) 제분공업에서 사용하는 원심식 볼팅(bolting)기계나 체질(sifting)기계(**제8437호**)
- (e) 금속용(예: 주철관용)(**제8454호**)이나 경화되지 않은 시멘트(콘크리트관 주조용)용의 원심주조기(**제8474호**)
- (f) 원심분쇄기(**제8474호**)
- (g)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원심 스펀 드라이어(**제8486호**)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 그러나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밀크 여과기·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하며**, 또한 다용도 용기·탱크 등으로서, 예를 들면, 자갈·모래·목탄 등을 적층 모양으로 넣어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도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기나 장치에는 액체용인지 기체용인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두 가지의 형으로 구분된다.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펠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키질구어(kieselguhr)·소결(燒結)합금의 가루·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지방모양·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나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으므로 ;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water purifier)”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filter)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 용수 필터** : 가압형 가정용 필터는 수도관이나 탭에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통 금속 용기에 들어 있는 원통상의 도자제 여과용 엘리먼트(element)로 구성되어 있다. 중력식의 것도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보다 대형이다. 다만, 이 호에서 도자제나 유리를 주재료로 한 필터는 **제외한다**(각각 **제69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 (2) **인조섬유 제조용 필터캔들(filter candle)** : 방직용 섬유의 엘리먼트를 내장한 내식성(耐蝕性) 용기로 구성되며 방사액(스피닝 용액 : spinning solution)을 여과한다.
 - (3) **내연기관용과 공작기계용 등의 오일필터(oil filter)** :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형이 있다.
 - (i) 보통 펠트·금속거즈·강(鋼)의 울(steel wool)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 엘리먼트를 갖춘 것
 - (ii) 기름으로부터 철의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을 갖춘 것
 - (4) **보일러용수용 필터(filters for boiler water)** : 내부에 여과재의 적층을 갖는 커다란 용기로 구성되며 출입구관 이외에 물의 역류에 의하여 필터 엘리먼트를 청정하는 별도의 관과 밸브의 조적이 있다.
 - (5) **필터프레스(filter press)** : 수평으로 배열된 일련의 여과 용기로 구성되며 용기는 용이하게 분리되는 수직의 필터 플레이트와 필터 프레임로 되어 있으며 ; 이들은 여과재[포(cloth)·셀룰로오스 등]로 싸여 있으며 나선이나 압축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지지되어 있다. 액체는 펌프에 의하여 셀을 통하여 압송되며 용기는 증기 등에 의하여 내부로부터 가열된다. 여과액은 밖으로 압출되고 잔재물은 플레이트 사이에서 덩어리 모양으로 남게 된다. 필터프레스는 여러 가지 액체의 여과나 청정용(예: 화학공업·제당·양조·주조·정유·정광·세라믹·인조섬유 제조용 등)에 사용한다.
 - (6) **회전드럼형 진공필터(rotary drum vacuum filter)** : 여과포(濾過布)나 거즈가 덮힌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되며 여과할 액체가 담긴 탱크 속에 장치된다. 액체는 드럼 속으로 흡인되고 고체 상태의 잔재물은 외면으로부터 기계장치에 의하여 제거된다.
 - (7) **단속식 진공필터(intermittent vacuum filter)** : 각각 여과포로 덮여 있고 한 개의 진공라인에 연결된 다수의 여과판이나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필터는 공급탱크에 잠겨있고 진공이 걸려 있다.
 - (8) **화학식 수청정기(chemical water purifier)** : 예를 들면, 퍼뮤타이트(permutite)나 제올라이트(zeolite) 경수연화 장치와 석회수청정기
 - (9) **전자석식(電磁石式) 수청정기(electro-magnetic water purifier)** : 이 청정기는 교번자계(alternating magnetic field)의 작용에 의하여 수중의 석회염이 결정화하여 관의 내측에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 대신에 염류는 침적물로 분리되어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
- 이 호에는 또한 **투석장치(dialyser)**를 포함한다. 이 장치는 반투막을 사용한 특수한 형의 필터로서 용액이 확산작용에 의하여 반투막을 통과하여 콜로이드(colloidal) 입자로부터 분리된다.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두 가지 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포(cloth)·금속 스펀지·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미끄러운 표면에 걸쳐 수집된다. 이러한 형태의 필터는 때로는 팬(fan)이나 물의 분사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첫번째 형의 필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 : 이러한 필터에는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시스템을 복합한 것이 많다.
- (ii) **백(bag)필터** : 일련의 백 모양의 여과포(濾過布)로 구성되며 때로는 수집된 입자를 백의 저부(低部)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진동장치와 결합되어 있다.
- (iii) **스크린 필터** : 두 개의 롤러 위에서 작동되는 엔드리스형 여과 거즈가 여과실 내를 가로질러 펼쳐져 있고 그 속을 가스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스크린은 스크레이퍼(scraper)기구로 정화된다.
- (iv) **회전드럼식 필터** : 예를 들면, 모래의 분사용 플랜트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공기가 흡인되는 필터드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드럼에서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한 스크레이퍼(scraper)와 반대로 드럼이 회전한다.

두번째 형의 필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v) **제진기(dust extraction)·연기필터(smokes filter) 등** : 가스기류 중의 입자의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방해판(baffle)·대향하고 있지 않은 전후공을 갖는 칸막이판·원형이나 나선형의 회로로서 방해판이 붙은 것·링 모양의 방해판을 여러 개 적층한 원추형이 붙은 것 등이 있다.
 - (vi) **사이클론(cyclone)** : 보통 원통형의 탱크에 내장된 금속제 원추로 구성된다. 접선 방향의 파이프로부터 보내진 가스는 원추의 보다 좁은 부분에 유도되어 원추의 넓은 부분으로 접근함에 따라 난류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먼지는 탱크의 저부(低部)에 침하한다.
- (2) **정전식 필터(electrostatic filter)**(공기나 그 밖의 가스용) : 주요부는 보통 정전기가 충전된 일련의 수직의 선(wire)으로 되어 있다. 진공 중의 먼지는 장치 속을 통과할 때 선상에 부착 포집되어 주기적으로 제거된다.

- (3) **가스세정기(gas scrubber)나 가스흡수기(gas absorption tower)** : 발생로가스(producer gas)·석탄가스 등의 청정에 사용하며 코크스나 그 밖의 충전재로 채워진 금속으로 만든 높은 탑으로 구성되며 꼭대기에는 물의 분사장치가 붙어 있다.
- (4) **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

*
* *

이 그룹에는 또한 핵공업에서 쓰는 다음 기계를 포함한다. 방사성 먼지를 제거하도록 특별히 제작한 에어필터(air filter)(물리형 또는 정전형) ; 방사성 요소의 유지용 활성탄 정화기 ; 방사성 동위원소 분리용의 이온교환기(전기투석에 의하여 작용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 방사선이 조사(照射)된 연료용이나 폐수 처리용의 분리기[이온교환이나 화학적 작용(용제(溶劑), 침전 등에 의하여)에 의하여 작동되는지에 상관없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 필터 프레스용의 새시·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

다만,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 (a)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용의 가스확산기기(제8401호)
- (b)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나 제8479호의 공기제습기
- (c) 포도주용 프레스와 사과술용 프레스 등(제8435호)
- (d) 인공콩팥(투석 : dialysis)기기(제9018호)

84.22 -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접시세척기

8422.11 -- 가정형

8422.19 -- 기타

8422.2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422.30 -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4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8422.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유리잔·수저·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를 결합했는지에 상관없고, 전기 작동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합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 (1) 병·항아리·캔·상자·통·교유기·크림 세퍼레이터용의 볼(bowl)이나 그 밖의 용기의 청정용·세척용·세탁용이나 건조용 기계(증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기계는 소독이나 살균용 장치를 갖춘 경우도 있다.
- (2) 여러 가지 용기[예: 통·베럴(barrel)·캔·병·항아리·튜브·애플·상자·포장]의 충전용 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이나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 장치와 봉합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 (3) 병과 항아리의 봉합용 기계와 코킹(corking)이나 뚜껑을 씌우는 기계 ; 캔 봉합과 봉지용 기계 (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

- (4) 포장과 카토닝머신(cartoning machine)[성형·인쇄·결부·스테플링(stapling)·태핑(tapping)·접착(glueing)·봉합·그 밖의 포장의 완성가공용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통조림이나 병조림 등을 외장용의 용기[크레이트(crate)·상자 등]에 포장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 (5) 레이블링 머신(labeling machine)(레이블의 인쇄·절단과 풀칠용의 것도 포함한다)
- (6) 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 : 실제에 있어서 이 기계는 액체와 탄산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병의 충전과 봉합기계이다.
- (7) 베일링기(baling machine)와 밴딩기(banding machine) : 수동식의 휴대용 기계가 포함되며, 베일(bale)·케이스나 그 밖의 포장된 물품 위에 해당 기계를 놓아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된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는 앞에 설명한 몇 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진공(*in vacuo*)이나 그 밖의 제어된 기압조건하에서의 충전·밀봉을 행하는 기구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이나 계측용 기구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예로서 이 호에는 이차적 기능으로서 절단·형입·프레스 등으로 미리 조정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상품제시적 형태로 만드는 기구를 결합시킨 기계도 포함한다[예: 버터나 마가린을 블록(block) 모양 등으로 성형하고 다시 이를 포장하는 기계].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적 기능이 포장이 아니고 소재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기계(예: 담배의 제조포장 겸용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그러나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의 경우, 그 자체가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 구성기계의 부분품은 그 기계가 열거된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중량검사기의 부분품(제8423호)·종이 상자와 종이 백 제조기의 부분품(제8441호)과 인쇄기의 부분품(제8443호)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가정용의 병조립이나 통조림 기계와 그 밖의 가정용 기기로서 중량이 10kg 이하인 것(제8210호)
- (b) 벧짚이나 건조용 베일러(baler)(제8433호)
- (c) 종이 백(bag)과 종이 상자 제조기(제8441호)
- (d) 포대에 충전한 후 결합하기 위한 재봉기(제8452호)
- (e) 금속 스크랩을 압축하여 베일(bale)로 만드는 기계(제8462호)
- (f) 상자용 네일링기계(nailing machine)(제8465호)
- (g) 봉투에 편지를 삽입하는 기계나 이들을 종이 밴드로 싸는 기계(제8472호)



[소호해설]

소호 제8422.11호

이 소호에는 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정형의 접시세척기를 분류한다(그들의 의도된 용도에는 상관없다). 바닥에 세워놓을 경우 이들 기계의 외부치수는 다음과 같다.

폭 : 65cm 이하

높이 : 95cm 이하

깊이 : 70cm 이하

테이블이나 카운터 위에 세워놓을 경우 이들 기기의 치수는 상당한 정도로 작을 수도 있다.

84.23 -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 8423.1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 8423.2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 8423.30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 8423.81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 8423.82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8423.89 -- 기타
- 8423.9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감량이 50mg 이하인 것(제9016호)을 제외하고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電磁式)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측정물과 추(교환될 수 있는)를 평형하게 하거나, 중량계산눈금이 있는 빔(beam)상에 있는 이동식의 추(커서)를 손으로 이동시키거나(대저울이나 그 밖의 저울), 스프링·레버·카운터 웨이트(counterweight)나 액압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의 스케일이나 표시기에 자동 기록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 (B) 중량을 측정하는 원리로 작용하나 중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다른 단위(예: 용량·수량·가격·길이)로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기
- (C) 제품의 균등성 검사, 표준중량에 의한 물품의 결함을 표시하거나 포장하고자 하는 물품을 설정된 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 설정기

이 호에 해당되는 형태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스프링식 저울
- (2) 가정용과 점포용 저울
- (3) 편지와 소포용 저울
- (4) 체중측정용 저울(코인 작동식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 (5) 휴대식이나 이동식 플랫폼형식의 저울

- (6) 계량대(다리저울)(액압식이나 그 밖의 것)이나 그 밖의 플랫폼저울
- (7) 컨베이어 밴드나 고가식 컨베이어 위에서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울
- (8) 중량식 계수기
- (9) 검정저울(check scales)과 같은 정량저울(constant weight scales)(표준량에 대조하여 초과나 부족을 지시한다)과 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의 균일성을 검사하기 위한 연속저울(continuous weigher)
- (10) 호퍼(hopper)에서 방출되는 원료를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hopper scales)(혼합물을 조합할 때 수 개의 호퍼로부터 방출되는 성분 원료의 중량을 계량하는 스케일을 포함한다)
- (11) 포대나 용기 속에 미리 예정된 재료를 넣어주기 위한 저울. 다만, 일반적으로 상거래되는 것과 같이 물품을 제시하는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 (12) 액체의 연속적인 흐름의 중량을 계량하는 자동 저울(automatic balance)
- (13) 미리 포장해 놓은 물품을 자동적으로 무게를 달고 레이블(label)을 붙이는 기기로서 계량기·계산기와 포장된 포장물을 계산하는 적산계(package totaliser)와 레이블 압출기를 갖춘 프린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량기는 자동적으로 중량 티켓을 인쇄하고 일련의 계량 작업을 기록하고 계산하며 또한 눈금의 투영이나 확대 등을 하는 장치와 결합된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저울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와 재료로 만든 추를 분류한다(세트로 된 것인지 케이스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단독으로 제시된 **제9016호**에 해당되는 정밀저울용 추도 포함하며 ; 다만, 추가 이러한 정밀저울로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016호에 분류한다. 커서추(cursor weight)[플라티늄(platinum)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계량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저울대(눈금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저울접시와 대 ; 기관·지지구와 틀 ; 나이프에지(knife-edge)·피벗(pivot)과 피벗베어링(pivot bearing)[마노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만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제7116호)**] ; 유압식 대쉬포트(hydraulic dash-pot)(진동댐퍼 : oscillation damper) ; 중량지시 다이얼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유체정역학(hydrostatic)[또는 비중(specific gravity)] 천칭(**제9016호**)
- (b) 기계적 부분품을 평형되게 하는 기계(**제9031호**)
- (c) 물품·사람·동물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주로 견인력·압축력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된 종류의 동력 시험기(dynamometer)와 같은 기기(**제9024호**나 **제9031호**)



[소호해설]

소호 제8423.20호

이 소호에 해당하는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scales for continuous weighing of goods on conveyor)은 총액계량(totaliser)일 경우도 있고, 집적계량(integrating)의 종류일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버킷 속, 체인 위나 이와 유사한 것에 통과시킬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것이다.

84.24 -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424.2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8424.3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 8424.41 -- 휴대용 방제기
- 8424.49 -- 기타
 - 그 밖의 기기
- 8424.82 -- 농업용이나 원예용
- 8424.89 -- 기타
- 8424.90 - 부분품

이 호에는 분사·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예: 모래·가루·알갱이·그릿(grit)·금속 연마제]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는 다양한 재료(예를 들어, 돌·복합물·고무·유리·금속)를 정밀하게 절단하도록 설계된 수압(water-jet)이나 수압-연마제혼합(water-abrasive jet) 절단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음속의 두 배부터 세 배까지의 속도로 물이나 미세한 연마제와 혼합된 물의 흐름으로 3,000bar부터 4,000bar까지 압력에서 작동된다(**제8456호**).

(A)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포말 소화제나 그 밖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탭(tap)·밸브·뇌관(percussion cap)이나 그 밖의 개구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소화탄과 소화기용 소화제(**제3813호**)
- (b) 소화용 펌프(내부저장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차량식이 아닌 것은 **제8413호**, 차량식의 것은 **제8705호**)

(B)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나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의 저장기와 직접으로나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스프레이건은 노즐(nozzle)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나 그 밖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jet)나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는 페인트나 디스탬퍼(distemper)·바니시(vernish)·오일·플라스틱·시멘트·금속 가루·방직용 섬유·더스트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빌딩의 석조부·조각 등의 청소를 위하여 압축공기나 증기의 강력한 제트 분사하는데도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인쇄기에 부착되는 손으로 조정하는 “안티 스머지(anti-smudge)” 분무장치를 분리하여 제시된 것이 포함되며 블로우 파이프의 원리에 의하거나 전기가열장치와 압축공기의 제트의 복합된 효과에 의하여 조작되는 용융(鎔融) 금속분무기도 포함한다.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레이 건[펌프와 분무할 재료(페인트·바니시 등)의 용기를 갖추고 있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모래 분사기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한다.

(D) 주수기(syringe)·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

이들은 농업용·원예용이나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진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가루 살포기·배양식 분무기와 이동식 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piston) 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이나 페달식으로 된 기기를 포함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펌프용이나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8705호**의 차량을 구성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무식이나 제트식으로 살포하는 기구나 분무 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 한**, 이 호에는 고정식·이동식이나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를 포함한다.

- (1) 잔디용·과수원용의 살수기와 분무기(예: 회전식 스프레이이나 진동식 스프레이)
- (2)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기계식 윈드 스크린과 헤드램프 세정장치와 잡초 구제나 그 밖의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염 방사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간단한 압력 배출식 밸브를 갖춘 압력용기에 넣은 살충제(**제3808호**)
- (b) 호스용 노즐(탭·콕·밸브나 그 밖의 유체 유량 조정용 기구를 갖춘 것은 **제15부나 제8481호**)
- (c) **제9018호**의 의료용 기기
- (d)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제9616호**)

(E) 관개시스템

이들 관개시스템(irrigation system)은 여러 가지 독립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제어장치(control station)[망으로 된 여과기 · 비료주입기 · 계량밸브 · 논리턴(non-return)밸브 · 압력조절기 · 압력계이지 · 배기구 등] ;
- (ii) 지하배관시설[제어장치(control station)에서 관개지역까지의 송수용 배관선과 지선]과 ;
- (iii) 지상배관시설[적수기(滴水器 : dripper)가 붙어있는 적수기 선(dripper line)]

이러한 시스템은 제16부의 주 제4호의 의미에 해당하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이 부 총설 참조).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파라핀 왁스나 용융왁스(molten wax)를 분사하여 여러 가지 물품[예: 컵 · 카톤(carton) · 박스]를 도포하는 기계
- (2) 정전기식(electrostatic) 도장기기 : 신축성 있는 튜브로 페인트 용기에 연결되고, 전선으로 고압발전기에 연결된 스프레이건으로 구성된다. 도장될 물품과 건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기장은 그 물품에 압축공기로 분사되는 페인트 입자를 흡인하고 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 (3) 액체나 가루를 분사용 · 분산용 · 분무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산업용 로봇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특히 분무기용 저장통 · 스프레이 노즐 · 랜스[취관(吹管)]와 난류 스프레이 헤드 등으로서 **제8481호**에 해당되지 않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수동식 오일주입캔 · 그리스건(**제8205호**)과 압축공기식 그리스건과 그 밖의 강력공급 유회장치(**제8467호**)
- (b) 보일러용 증기분사식 그을음 제거기(**제8404호**)
- (c) 노(爐)용 버너(**제8416호**)
- (d) 물 · 증기 · 모래 등을 분사하여 통이나 그 밖의 용기를 세정하는 기계(**제8422호**)

- (e) 잉크젯 방식 인쇄기(제8443호)
- (f) 자동판매기식의 향수분무기(제8476호)
- (g) 모르타르(mortar)나 콘크리트의 살포용이나 도로 위이나 이와 유사한 표면에 자갈을 뿌리는 기계(제8479호)
- (h) 화물자동차에 탑재하도록 제작된 제설용 소금과 모래 살포기(제8479호)
- (ij) 반도체 웨이퍼와 평판 디스플레이 식각·현상·스트리핑(striping)이나 세척용의 분사기 ; 전기도금 공정 전에 반도체 패키지의 금속 리드(metal lead)에서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기기(고압 스프레이에 의한 제거)(제8486호)
- (k) 제8515호의 금속이나 서멧(cermet) 열분사용의 전기기기
- (l) 제트(jet)식 치과용 드릴(제9018호)과 에어로졸(aerosol)식 치료기(nebuliser)(제9019호)



[소호해설]

소호 제8424.20호

이 소호에는 제8424호 해설 (B)에 규정하고 있는 기기를 분류한다.

소호 제8424.41호

“휴대용 방제기(portable sprayer)”는 작동하는 사람이 핸들이나 하나 이상의 어깨끈으로 당기거나 운반하도록 설계된 분무기를 말한다.

이 소호에는 압력분무기[“스프레이 건(spray gun)”으로 판매될 수 있다]가 포함되는데, 이는 깔때기와 통합 압력 펌프를 내장한 압력 탱크·운반 끈·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그리고 황동 랜스와 조절 가능한 노즐이 달린 휴대형의 스프레이 대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구성요소들은 명백히 농업이나 원예용에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물리적 특성(예: 3바의 작동압력·5리터 용량·조절 가능한 노즐 구멍)을 나타낸다.

이 소호에 분류하는 휴대용 방제기의 예를 더 들어보면, 수동 압축 레버 작동식 배낭형 분무기, 모터가 달린 배낭형 송풍식 분무기, 작동자 운반식 로터리 노즐 분무기와 수동으로 당기고 미는 붐(boom)방식 분무기가 있다.

이 소호에는 뜨거운 안개와 찬 안개를 뽑는 연무기(煙霧機 : fogger)는 포함되지 않는다.

**84.25 -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원치(winch)와 캡스틴(capstan), 잭(jack)**

-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 -- 전동식

8425.19 -- 기타

- 원치(winch)와 캡스틴(capstan)

8425.31 -- 전동식

8425.39 -- 기타

-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8425.42 --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8425.49 -- 기타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捲揚)이나 취급장비를 분류한다. 이들 장비가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 기계·다목적 기계와 권양(捲揚)·적하(積荷)·취급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제8426호 해설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만일 원치(winch)가 트랙터의 정상적인 작업공구가 되는 경우 완전한 전체 기계[트랙터와 원치(winch)]로 제8701호에 분류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는 권양(捲揚)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 장점을 취하여 설계된 다소 복잡한 풀리(pulley)·케이블·체인·로프[예: 직경이 다른 수 개의 풀리·기어 시스템을 사용]로 형성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풀리(pulley) 원주상의 특별히 설계된 돌기부에 체인을 끼우도록 된 태클(tackle)과 호이스트(hoist)
- (2) 풀리(pulley) 기구를 내장한 드럼 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되어 있는 드럼형의 풀리 호이스트(pulley hoist). 이 내장형 호이스트(hoist)는 보통 공기식이나 전기식으로서 고가 레일 위를 주행하는 트롤리(trolley)나 크랩(crab) 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3) 호이스트(hoist)는 잭(jack) 장치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어 크랭크(crank) 핸들이나 레버에 의하여 조작되는 스프로킷 휠(sprocket wheel)의 전동장치 위를 주행하는 롤러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하여 제시하는 풀리(pulley)와 풀리블록(pulley block)은 **제외한다(제8483호)**.

다윗(davit)도 이 호에 포함되며 이것은 경사지거나 회전 가능한 두 개의 지주로 되어 있고 본선탄재보트가 이 지주에 매달려 활차형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승강된다.

(II) 윈치(winch)와 캡스틴(capstan)

윈치(winch)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horizontal ratchet drum)으로 구성된다. **캡스틴(capstan)**도 이와 유사하나 드럼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하역·발착·조타·어망예인·준설 등을 위한 선박용의 윈치(winch)와 캡스틴(capstan), 이러한 구동장치는 내장되어 기계와 일체로 되어 있다.
- (2) 트랙터용 윈치(winch) 등
- (3) 실질적으로 대마력동력 구동윈치(winch)로 구성되어 있는 갱구 감는 기어(pit-head winding gear)
- (4) 회전반 조작용이나 전철기용 등의 캡스틴(capstan) : 전철은 보통 견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베어링으로 자유로이 회전하는 여러 개의 블라드(bollard)를 따라 케이블이 통과한다. 이러한 블라드(bollard)는 **제7325호**나 **제7326호**에 분류한다.
- (5) 신선기(wire-drawing benche)용의 견인장치

(III) 잭(jack)

잭(jack)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랙와 폴잭(rack and pawl jack)**·나사의 회전이나 잭의 베이스에 부착된 너트(nut)의 회전에 의하여 나사가 들어 올려지는 **스크루 잭(screw jack)**과 잭의 베이스에 붙어 있는 너트 속에 외부 나사가 끼워져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동심나사의 운동에 의하여 작동하는 **신축스크루 잭(telescopic screw jack)**을 포함한다.

액압(hydraulic)과 공기압(pneumatic) 잭(jack)은 별개로 되어 있거나 내장된 펌프나 압축기에서 발생된 압력에 의하여 권양(捲揚)용 피스톤(piston)이 실린더(cylinder)에 따라서 들어올려진다.

특수형 잭(jack)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자동차용 등의 휴대 잭
- (2) 트롤리가 장착된 개러지(garage)용 잭 · 크레이트리프팅잭(crate-lifting jack) 등
- (3) 개러지형 내장식 잭 시스템(보통 유압식이다)
- (4) 화물자동차 경사(tipping) 장치의 잭
- (5) 정차 중의 기중기차 · 중량화물자동차 · 공작차 · 대포 등을 지면에 고정하기 위한 잭
- (6) 철도 레일(rail)을 들어올리기 위한 잭
- (7) 철도 차량을 들어올리기 위한 잭
- (8) 빌딩구조물 등의 일부나 거어더(girder)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작동 잭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장비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8412호**의 유압식이나 공기작동식 실린더(cylinder)
- (b) **제8608호**의 평면교차 제어기어와 철도 신호기기

84.26 -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천장주행 크레인 · 트랜스포터 크레인 ·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 교각(橋脚)형 크레인 · 이동식 양하대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8426.12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9 -- 기타

8426.2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8426.3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41 -- 타이어가 달린 것

8426.49 -- 기타

- 그 밖의 기계

8426.91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8426.99 -- 기타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捲揚)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를 분류한다.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mobile)” 기계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정치식 기계뿐만 아니라 이동식 기계도 포함되며 자주식(自走式)의 것도 해당한다(제17부에 해당하는 수송기기 위에 장착된 기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a) 제86류의 차량 위에 장착된 기계

레일 사이의 규격에 관계없이 철도망 레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열차에 연결하는데 적합한 종류의 화차나 무개화차 위에 장치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는 제8604호에 분류한다. 레일복구용 크레인이나 영구 레일(rail)이나 차량 보수용의 크레인 화차나 무개화차, 철도에서 화물을 양하(楊荷)하는데 사용하는 크레인화차나 무개화차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된다. 레일의 보수나 유지용의 자주식(自走式) 차량은 제8604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철도차량의 사양에 적합하지 않는 무개화차나 플랫폼 위에 장치된 권양용(捲揚用 : lifting) 기계나 취급용(handling) 기계는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 · 채석장 등에서 궤도상을 주행하는 것과 같은 건설업자용의 기중기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b) 제87류의 트랙터나 자동차 위에 장치된 기계

(1) 트랙터형의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이 호의 기계의 어떤 작업 부분은 트랙터에 장치되어 있다. 이러한 트랙터는 본래 다른 차량·기기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되며, 농업용 트랙터와 같이 작업기기 조작용의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기기는 그때 그 때의 작업에 응하여 사용하는 보조적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가볍고** 사용자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장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 작업기기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하였다 할 지라도 이 호의 기계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하거나 이들 기계의 부분품이 될 경우는 **제8431호**에 분류한다(트랙터 위에 장치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작업기기의 조작 장치가 붙은 트랙터는 **별도로 제8701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와 그 조작 장치가 서로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주식(自走式) 기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면, 트랙터와 유사한 주행부로서 이 호에 열거된 기능[권양(捲揚)·취급 등]의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기계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특별히 제작되고 보강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주행부는 분리하여 제시하더라도 그 완성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불완전한 기계로 보아 이 호에 분류한다.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수 개 호에서 분류 가능한 주행부는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작업부분품이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16부의 주 제3호나 해석에 관한 통칙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라서 분류한다.

제8701호의 트랙터와 이 류의 주행부를 구별한 상세한 기준에 관하여는 제8701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2) 자동차용 새시나 로리에 장치된 기계

어떤 하역기계(예를 들면, 보통의 크레인·응급작업용 크레인)는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새시나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용 새시나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 제어장치·조종용과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 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하는데, 양하(楊荷)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가 차량에 간단히 장치되어 있거나 일체 구조로 되어있는지에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본래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제8704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차량이 달린 새시에 장치한 양하(楊荷)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보통 크레인)의 운전실 내에 앞 항에서 설명된 주행용이나 제어용의 장치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자주식(自走式)기계를 포함하는데, 이 기계 전체가 해당 기계의 구동용 원동기에 의해서 도로를 주행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이 호에 해당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는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대하여 보조적이다.

(c) 제89류의 물에 뜨는 구조물에 장착된 기계

모든 권양(捲揚)용 기계나 하역용 기계[예: 데릭(derrick)과 크레인]는 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이 **제89류**에 분류한다.

다기능기계

대개 많은 기계들은 이 호나 제8425호·제8427호·제8428호에 기술된 기능[권양(捲揚)·적하(積荷)]을 수행하는 외에 제8429호나 제8430호에 기술된 기능[굴착·지균(地均)·천공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는 제16부의 주 제3호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다. 기중기의 팔(jibs)이나 단말부속장치의 교환에 의하여 기중기·탄층 절삭과 적하(積荷)의 복합기계·시굴과 파이프를 양강하는 복합기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식 셔블(shovels)·드래그라인 등이 그 예이다.

*
* *

다만, 권양(捲揚)용 기계·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揚)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로는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pedestals)와 구대(gantry)]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 한다 :

- (1) **브리지 크레인(bridge crane)** : 육중한 크로스빔이나 “브리지(bridge)”에 매어 달린 강력 한 권양(捲揚)장치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전체가 광폭의 레일 위로 이동한다. 핵연료의 교환 용이나 추출용의 원자로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브리지 크레인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 (2)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과 천장주행 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 : 빔 그 자체가 벽이나 적당한 금속으로 만든 지지구조물에 고정된 궤도 위를 주행한다.
- (3) **운송기중기(transporter crane)** : 고정식이나 주행식의 것으로서 매우 긴 것이 많고 보통 버어드(berths)나 양하장의 위로 뻗어 나온 캔티레버대(cantilever extension)(관절식인지에 상관없다)를 갖추고 있으며, 그 빔(beam)의 전장에 걸쳐서 주행하는 인양용의 권양(捲揚)용 트롤리나 크랩이 장치되어 있다. 건축용 석재의 취급용이나 컨테이너 취급용 그리고 조선 용의 특수형식의 것이 있다.
- (4)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mobile lifting frame)** : 특히 컨테이너 취급용의 타이어식 차륜 부의 것으로서, 이들 기계는 자주식(自走式)일 경우도 있다. **다만**, 정지 중에 조종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는 것이거나, 짐을 적재하고 단거리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 각각 1조의 차륜 위에 받쳐서 두 개의 수직주(신축식의 것도 있다)로 지지된 수평빔으로 구성된 간단한 문형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 (5)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는 “스트래들(straddle)”형식의 새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수직의 신축식 지주를 갖추고 있다. 새시는 보통 네 개나 그 이상의 타이어부 차륜에 장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륜은 보통 매우 작은 반경의 범위 내에서의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휠구동용과 조종용의 겸용으로서 사용한다.

스트래들 캐리어는 그 자체의 특수한 설계 때문에 화물의 위쪽으로 갔다델 수 있어서, 특수한 집는 장치(gripping device)로 화물을 들어 올리며, 단거리운반을 하고 다시 그 화물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러한 캐리어 중의 어떤 것은 해당 캐리어가 화물을 적재하거나 내리기 위하여 수송차량 위쪽으로 갔다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폭과 높이로 되어 있다.

스트래들 캐리어는 공장·창고·부두·공항 등에서 긴 형태의 화물[형재(profile shape)·나무줄기·목재 등]을 취급하거나 컨테이너의 적재에 사용한다.

- (6) **타워크레인(tower crane)** :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cylinder)나 잭(jack)과 클라이밍 프레임(climbing frame)을 포함하기도 한다.

- (7) **문형이나 페데스탈(pedestal) 크레인** :

항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철도 레일(rail)의 수배의 폭을 갖는 광폭레일상을 주행하는 4각의 높은 좌대에 지지된 지브기중기를 말한다.

- (8) **지브(jib)나 데릭(derrick) 크레인**(철도사고복구 기중기차·기중기 자동차·부기중기 등에 관한 이 호 해설의 전문 참조) : 지브나 데릭 크레인은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길이를 조절하여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립된 붐(boom)과 지브(완목)로 구성되어 있다. 견인 케이블은 완목의 선단의 풀리(pulley)를 통하여 윈치(winch)에 의하여 감겨진다. 지브(jib)나 붐(boom)은 상당한 높이를 갖는 수직으로 된 지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도 있다.

- (9) **케이블웨이(cableway)와 케이블 크레인(cable crane)** : 매달린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 크레인은 고정식이나 이동식의 탑 사이에 매달린 수개의 하중 케이블과 그 위를 주행하는 화물의 인양과 양하장치를 갖춘 한 개의 트롤리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규모의 건설현장·댐·교량 등에서 자재를 나르는데 사용한다.

- (10) **선박의 데릭(ships' derrick)** : 한 개의 직립된 고정주와 그 기부에 지점을 갖는 취급용 완목으로 구성되며 이 완목은 풀리(pulley) 장치에 의하여 화물을 들어올린다(부고 등에 장치된 유사한 기계에 관한 이 해설의 전문 참조).

- (11)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works truck)** : 이것은 공장·창고·부두나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며, 화물의 운반은 작업용 트럭형의 새시에 장치된 경량(輕量) 크레인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새시는 불균형을 피하기 위하여 보통 휠베이스가 길고 또한 폭이 넓은 상자형의 프레임 모양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제8705호**의 크레인로리(crane lorry)를 **제외한다**.

84.27 -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8427.2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8427.90 - 그 밖의 작업트럭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작업트럭(works trucks)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捲揚)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을 분류한다.

이러한 종류의 작업트럭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과 그 밖의 승강용이나 적재트럭

(1) **기계구동식의 포크리프트 트럭(fork-lift truck)** : 이러한 트럭(때로는 대형의 것도 있다)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는 보통 운전석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 운반 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捲揚)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측면 화물적재용 트럭(side-loading stacking truck)도 포함하는데, 그것은 긴 형태의 화물[대들보 · 판재 · 파이프 · 컨테이너 등]을 취급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보통 단거리운반 중 화물을 지지하기 위한 플랫폼이 갖추어져 있다.

위의 트럭의 승강기구는 보통 차량의 동력유닛에 의하여 구동되며, 또한 취급할 화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특수한 부착물[포크 · 지브(jib) · 버킷(bucket) · 그레브(grab) 등]을 부착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2) 그 밖의 **적하(積荷)기** : 보통 트럭 위에 장치되어 있으며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윈치(winch)나 래크(rack) 장치에 의하여 수직 지지물에 따라 상하하는 플랫폼이나 포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포장 · 상자 · 통 등의 적하(積荷)에 사용한다.

엘리베이터와 똑같은 원리로 작업하는 특정의 적하(積荷)기는 **제8428호**에 분류한다.

(B)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 · 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

(2) 특수 산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 권양(捲揚)용 장비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그 밖의 트럭**(예: 방직용 · 요업용 · 낙농용 등)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트럭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84.28 -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 8428.10 - 리프트와 스킵 호이스트(skip hoist)
- 8428.20 -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 8428.31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 8428.32 -- 그 밖의 버켓형
- 8428.33 -- 그 밖의 벨트형
- 8428.39 -- 기타
- 8428.4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 8428.60 -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 8428.70 - 산업용 로봇
- 8428.90 - 그 밖의 기계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揚)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揚)·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捲揚)용 기기나 취급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나 기체용의 권양(捲揚)용 기계나 취급용의 기계도 포함한다. 다만, **제8413호**에 해당되는 형의 액체엘리베이터와 액체부력만에 의하여 작동하는 부선거(floating dock)·코퍼댐(coffer-dam)과 이와 유사한 선박권양(捲揚)용과 부상용 장치는 **제외한다(제8905호나 제8907호)**.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mobile)"의 기계·다기능기계·권양(捲揚)용 기계·적하(積荷)용 기계·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揚)이나 취급 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들 고정식 구조부분[예: 텔레페릭(teleferic) 등을 위한 특수 제작한 철탑]이 거의 완전한 취급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예: 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 레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보다 복잡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 (A) **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winch)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이나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균형추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에 상관없이 제어·정지·안전 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인력으로 작동되는 리프트도 포함한다.

랙(rack)와 피니온(pinion)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와 호이스트(hoist)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는 피니온 톱니바퀴를 운전하는 모터(motor)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과 톱니 모양의 랙을 갖춘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 있다. 피니온 톱니바퀴가 톱니 모양의 랙과 맞물리게 되면 리프트 운전실에서 단독으로 마스트를 적절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소위 “쉽-리프트(ship-lift)”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한다. 즉, 이것은 매우 강력한 수압이나 잭(jack)으로 작동되는 장치로서 선박과 lock basin을 함께 한쪽 운하면에서 다른 쪽 운하면으로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일반적인 수문을 대신하게 된다.

- (B)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리프트의 일종으로서 벌크(bulk)화물 컨테이너를 사면이나 종축에 따라 끌어올린다. 이들은 탄갱에서의 석탄의 반출·고로·전로 등에서의 광석·석탄석·연료 등의 투입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스킵호이스트(skip hoist)용의 스킵(skip)도 포함한다. 이것은 대용량의 금속으로 만든 컨테이너로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저부를 갖춘 것이 많다. 광산용 스킵은 화물함 위에 광부용의 방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C) 특성의 인양(捲揚)기계

- (1) **리프팅 진(lifting gin)** : 쌍각이나 삼각 위에 윈치(winch)가 장착된 것
 - (2) **우물 천공용 데릭(well drilling derrick)** : 유정 등에 있어서 천공 튜브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화물자동차 등에 장착된 것 이외의 것. 제8426호 해설전문 참조)
 - (3) **텔퍼(telpher)** : 조작이 천장주행 크레인이나 운송 기중기와 유사하다. 인양용 트롤리가 철탑에 지지된 고가의 레일을 주행한다(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거리를 주행한다).
- (D) **텔레페릭(teleferic)** : 산간에서 승객이나 화물의 인양에 사용하는 대규모의 윈치(winch) 장치이다. 이들은 철탑 간에 매어달린 하중 케이블 위를 상하하는 두 개의 객실[또는 그랩(grab)·컨테이너 등]로 구성된다.
- (E) **퓨니쿨러(funicular)** : 텔레페릭(teleferic)과 같은 원리로 조작되나 객차가 레일 위를 주행하는 것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견인장치와 윈치(winch)만 이 호에 분류하고 ; 객차(제8605호)와 케조(유형에 따라 제7302호나 제8608호)는 제외한다.

- (F) **화차 경사기(wagon tipper)** : 가이드레일(guide rail)이나 홈(groove)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화차는 플랫폼의 내부에 끌어들여져 정위치에 고정된 후 잭(jack) 장치나 그 밖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기계 전체를 경사시키거나 회전시켜 화물을 배출하게 한다. 이 호에는 호퍼식 화차의 양하(楊荷)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차진동기(wagon shaking machine)**를 포함한다.

(II) 연속작동기계

- (A) **엘리베이터(elevator)** : 화물이나 승객을 수직으로나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한다. 이 기계는 본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continuous chain)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 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여러 가지 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가루 상태나 알갱이 상태의 원료 운반용의 버킷(bucket) 리프트·나무상자·소포 등 운반용의 플랫폼 엘리베이터·포대·짚뭉치·밀의 묶음 등의 운반용의 핑거트레이(finger-tray) 엘리베이터와 여러 개의 객실을 갖춘 승객 등 운반용의 연속리프트를 포함한다.
- (B) **에스컬레이터(escalator)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 (C) **컨베이어(conveyor)** :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연속적인 이동·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 들면, 버킷(bucket)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 스크레이퍼(scraper)나 스크루 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이나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 밴드·벨트·에이프런(apron)·슬래트(slat)와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
 - (2) **일련의 원동기 구동 롤러로 구성되는 컨베이어**[예: 분쇄 압연기(cogging mill)에 강(鋼)재료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것] :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않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한다(나무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이나 중력롤러컨베이어). 다만, 롤러가 없는 유사한 장치로서 직선·곡선이나 나선 모양의 단순한 활대(sliding chute)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형에 따라 **제7308호·제7325호·제7326호**).
 - (3) **진동식(vibrator)이나 요동식(shaker) 컨베이어** : 화물을 지지하는 통의 진동이나 왕복운동에 의하여 작동한다.
- (D) **압축공기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예: 압축공기식 튜브 컨베이어) : 소형 용기(서류용 소형가공 부분품용 등)나 벌크화물(곡물·짚(straw)·건초·톱밥·분탄 등)이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관(管)속을 유통하도록 되어 있다(곡물의 운반과 청정을 동시에 하는 유사한 기계도 포함한다).
- (E) **롤러식 지지물(roller support)("castor")** : 롤러컨베이어와 같이 공장의 바닥에 고정된 여러 개의 원통상의 지주로 구성된다. 지지의 선단은 모든 방향으로 자유로이 회전하는 베어링을 갖춘 롤러로 구성되어 이 지지물("castors")의 세트는 전체로서 롤러테이블 기구를 구성한다(예: 압연공장에서 금속판을 다루는데 사용한다).
- (F) **케이블로 작동하는 견인기(cable-operated hauling or towing machine)** : 이 기계는 본질적으로 엔드리스케이블이나 체인으로 구성되며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화차를 견인하거나[예: 석탄 운반차나 경사(tipping)가능 화차에 사용한다] 부선이나 썰매 등을 끌거나 승객을 운반한다(스키리프트).

(III) 그 밖의 특수 권양(捲揚)이나 취급기계

- (A)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기관차·트럭 등을 옮겨놓기 위하여 **기관차나 화차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 (B) **여러 가지의 화차를 미는 기계**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레일의 중간에 고정되는 장치 : 실질적으로 두 개의 동력구동 왕복피스톤으로 구성되며 이 피스톤(piston)이 차량에 작용하여 화차를 앞으로 밀어낸다.
 - (2) 갱구 케이지(pithead cage) 속으로 광산용 화차를 밀어 넣기 위한 유압식 램이나 피스톤(piston)식의 기계
 - (3) 영구부설 레일의 한 개의 레일 위를 주행하는 일륜식 주행기계 : 이것은 외바퀴 손수레와 같은 동일 방법으로 보행운전자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형 트랙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그러나 흔히 “왜건푸셔(wagon pusher)”로 알려져 있고,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소형 트랙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701호).
- (C) **기계식 적하(積荷)기** : 석탄·광석·파낸 흙·자갈·모래 그 밖의 벌크화물을 긁어모아 적하(積荷)하는 기계. 이 기계는 컨베이어나 엘리베이터와 결합된 것이 많다[예: 진동식 컨베이어 로더(loader)와 픽업(pick-up) 컨베이어 로더 등].
- (D)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의 수지공구(드릴·해머 등)에 필요한 기계식 보조장치** : 이 장치는 수지 공구를 지지하거나 작업 위치로 밀어내는데 보조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공기식 수지공구의 지지구나 압출구 ; 드릴 리그(drilling rig)나 이동차(“Jumbo”) ; 작업 할 때 공구를 늘어뜨리는 기계식 균형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간단한 고정식 지지구 등은 **제외한다**.
- (E)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산업용 로봇**
- (F) **기계식 사다리** : 기계[예: 폴리태클(pulley tackle)이나 윈치(winch)]에 의하여 활주하는 수 개의 부분실로 구성되는 기계식 사다리
- (G) **기계식의 조정가능한 바퀴달린 플랫폼(“dolly”)** : 영화촬영기를 장치하여 조작하기 위한 대차
- (H) **기계식 원격조작기** : 방사성 물품용으로 고정식이나 이동식이 있으며, 차폐용기 바깥쪽에 암(arm)이 달려 있으며, 이것은 수동적으로 용기 안쪽에 있는 암에 전해지며, 이것은 조작자(운전자)의 동작을 재현한다. 동작의 전달은 기계식·유압식이나 공기식의 기기나 전기적 진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손에 넣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조작기(수공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제8203호·제8204호나 제8205호**에 분류한다.
- (I) **플랫폼(platform) : 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으며**, 컨테이너나 팔레트의 취급용으로 공항에서 항공기의 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장비는 주로 두 개의 비스듬한 크로스멤버(cross-member)로 지지되어 승강시키도록 된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동벨트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장비는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아주 짧은 거리에는 옮겨 놓기는 하지만 운송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의 옆 빈곳에 갖다놓고 단지 그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

- (K) **팔릿타이서(palletiser)** : 전기구동식의 기계로서 빈병을 자동적으로 규칙적인 열을 지어 정돈하여(동력이나 풀러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층층이 쌓기 위하여 완전히 정돈된 병들을 팔릿(pallet) 위에 운반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들 팔릿타이서는 병들을 충전·봉합·봉인·레이블 첨부나 결속을 하지는 않는 것이며, 다른 기계와 결합되지 않는 단독상태일 수도 있거나 가공공정에서 충전이나 수축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계를 포함시켜 결합될 수도 있다.
- (L) **환자용 리프트** : 이것은 욕실이나 침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올리거나 내리는 용도의 의자와 지지구조를 갖춘 장치이다. 움직이는 좌석은 로프나 체인으로 지지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다.
- (M) **층계 리프트** : 이 기계는 적하(積荷)용 플랫폼을 갖춘 권양(捲揚)용 장치로서 계단 난간과 계단실 벽이나 계단에 고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사용한다.

*
* *

화물 권양(捲揚)과 취급장치는 노(爐)·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가공대상물의 삼입·조작·취출기; 도어·커버·난로 등의 조작용 기계; 경사(tipping)나 선회용 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爐)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노열의 배후를 왕복하며 문을 열게 하고 레토르트(retort)의 내용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피스톤(piston)을 장치한 **코크스노(爐) 배출기**
- (2) **사이멘스 마아틴(Siemens Martin) 전환로(converter)용 등의 램(ram)식이나 피스톤(piston)식 원료투입기**
- (3) 금속 소둔(燒鈍 : annealing)로나 균열로의 덮개를 올리거나 잉곳(ingot)을 인출하기 위한 **특수 인양기**
- (4) **잉곳(ingot)용과 단조(鍛造 : forging)용 등의 취급기·경사기 등**
- (5) 램이나 피스톤(piston)을 갖춘 실린더(cylinder)의 작동에 의하여 노(爐 : furnace) 내에서 처리되는 물품을 투입하거나 끄집어내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노(爐)에서 사용하는 **기계**

다만, 화물의 권양(捲揚)이나 취급기계로서 노(爐)와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제8454호·제8455호 등 참조).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기계식 스토커(stoker)·기계식 불판(grate)과 이와 유사한 장치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6호).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버켓(bucket)식 · 체인식 · 스크루식 · 밴드식이나 이와 유사한 종류의 액체 엘리베이터(**제8413호**)
- (b) 토양 · 석(石) · 광석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의 광물성 물질용의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나 세정기(**제8474호**)
- (c) 탑승교(**제8479호**)
- (d) 보울(boule) · 웨이퍼(wafer) · 반도체 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이나 평판 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용 · 취급용 · 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전용이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기기(**제8486호**)
- (e) **제8608호**의 전차대(轉車臺)
- (f) 덤프차(**제8704호**)

84.29 -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레이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 로드롤러(road roller)

-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8429.11 -- 무한 케도식

8429.19 -- 기타

8429.2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8429.30 - 스크레이퍼(scraper)

8429.4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8429.52 -- 360도 회전 of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8429.59 -- 기타

이 호에는 이 호에서 명백하게 열거하고 전부 자주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흙이나 토양의 채굴용 · 굴착용 · 다지기용의 대다수의 기계를 분류한다.

자주식(自走式)과 다기능 기계에 관계되는 제8430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자주식(自走式) 기계에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계들을 포함한다.

(A)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이들 기계는 주행부(때로는 무한케도식이다)와 전면에 부착된 큰 블레이드가 일체 구조로 결합된 기계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파쇄물의 제거와 거칠게 땅을 고르는데 사용한다. 어떤 종류의 형은 주로 땅을 파헤치거나 토지 개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B)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 이들은 보통 전후 양자 사이에 장치된 조절 가능한 그레이딩날(grading blade)에 의하여 지균(地均) 작업이나 평활화 작업(평탄면이나 경사면의 위에서)을 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계이다.

(C) **스크레이퍼(scraper)** : 이것은 표면의 상층을 깎아내기 위한 예리한 절삭날(cutting edge)을 갖추고 있으며 깎긴 흙은 스크레이퍼의 동체 내에 보내지거나 컨베이어에 의하여 배출된다.

이 호에는 모터(motor) 추진 장치와 스크레이퍼가 일체의 기계장치로 형성되는 스크레이퍼만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예를 들면, 무한케도식의 스크레이퍼가 있는데, 그 스크레이퍼 본체에는 트랙 사이에 장치되어 있는 커팅 블레이드와 결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모터(motor) 추진장치(단일축을 갖춘 것도 가능하다)와 스크레이퍼로 구성되는 관절이 있는 스크레이퍼를 포함하며 이것은 하나의 고정된 블레이드(blade)를 갖추었거나 여러 개의 블레이드로 착탈이 가능하다.

- (D) **탬핑머신(tamping machine)** : 도로건설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철도로반의 자갈을 다지는 등의 작업에도 사용한다(그러나 제86류의 차량에 장치된 기계에 관한 제8430호의 해설 전문 (a)항을 참조한다).
- (E) 자주식(自走式) **로드롤러(road roller)** : 도로건설이나 그 밖의 토목공사에 사용한다(예: 토지용이나 노면의 롤링용)
이들 기계는 직경이 크며, 평평하고 육중한 철강으로 만든 실린더(cylinder)가 붙어 있거나 금속제 발(足)이 달려있고[이것으로 지면을 눌러 다진다(“sheep’s-foot” rollers)], 바퀴와 중량급의 솔리드 타이어나 공기타이어가 붙어 있다.
- (F) **기계식 셔블(mechanical shovel)(붐식·지브식의 것이나 케이블식의 것)** : 이것은 붐(boom)이나 지브(jib)의 선단으로 직접 작동하거나[셔블(shovel) 굴착기·드래그셔블(drag shovel) 등] 작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브로부터 늘어트린 케이블의 선단이나 하이드릴 잭(jack)에 의하여 작동하는(드래그라인) 굴착용 버킷(bucket)·그랩(grab)기 등에 의하여 지면의 고저에 관계없이 토양을 굴착하는 것이다. 장거리 **굴착기**[슬래그(slag)라인 드래그 라인]에 있어서는 버킷(bucket)이 약간의 간격을 둔 두 개의 이동식 구조물간을 연결하는 케이블 위에서 주행작동한다.
- (G) **멀티버킷(multi-bucket) 굴착기** : 이것은 수개의 굴착용 버킷(bucket)이 엔드리스체인이나 회전륜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기계는 굴착된 토양을 배출하기 위한 컨베이어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 많으며 보통 차륜식이나 무한궤도식 새시 위에 장치되어 있다. 특수한 형의 것은 참호·하수구·도랑 등 노천채굴(노천광)에 이용된다.
- (H) **자주식(自走式) 셔블로더(shovel-loader)** : 이들 기계는 바퀴가 달렸거나 전면에 버킷(bucket)이 달린 무한궤도식 기계로서 이 기계의 작용으로 물체를 퍼 담아서 수송한 다음 쏟아낸다.
어떤 “셔블로더(shovel-loader)”는 땅속을 굴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위치가 수평으로 될 때에 바퀴나 트랙의 수준보다는 더 낮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킷(bucket)으로서의 목적이 달성된다.
- (I) **로더 트랜스포터(loader-transporter** : 광산에서 사용) : 이들 기계는 취급이 주기능이고 수송은 하지 않으며 전면에 버킷(bucket)을 붙인 것으로서 벌크상의 물질을 퍼 담아서 기계 본체에 쏟아낸다.
이 호에는 또한 자주식(自走式)의 셔블로더(shovel loader)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버킷(bucket)과 함께 관절성의 팔을 가지며, 뒷쪽에 장착한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특히 작업공구 [블레이드·버킷(bucket) 등으로 붐(boom)과 공기식이나 유압식 실린더(cylinder)를 붙인 것인 지에 상관없다]로서 주행부에 직접 장치하기에 알맞은 것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84.30 -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
탐핑(tamping)용·컴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향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
블로어(snow-blower)(+)**

- 8430.10 - 향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 8430.2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 8430.31 -- 자주식(自走式)
- 8430.39 -- 기타
 -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 8430.41 -- 자주식(自走式)
- 8430.49 -- 기타
- 8430.5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8430.61 -- 탐핑(tamping)용이나 컴팩팅(compacting)용 기계
- 8430.69 -- 기타

이 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自走式) 기계와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과 파괴용; 토양의 굴착·
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다지기용 기계[예: 스크레이핑(scraping)·지균(地均: levelling)·정지
(整地: grading)·탐핑(tamping)이나 롤링(rolling) 등]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또한 향타기(杭打機:
pile-driver)·항발기(抗拔機: pile-extractor)·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를 포함한다.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 기계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비번경식이나 비이동식 기계 뿐만 아니라 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
없이 이동식 기계도 포함한다(다만, 아래와 같이 제17부에 해당하는 수송기기 위에 장치된 기
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제86류의 차량에 장치된 기계

굴착용 등의 기계가 레일 사이의 규격에 상관없이 철로를 주행하는 열차에 연결하는데
적합한 종류의 화차나 트럭 위에 장치된 경우에는 **제8604호**에 분류한다. 철도선로용 자갈
을 굴착하면서 채로 치는 기계는 그러한 종류의 화차나 트럭 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진짜 철도 차량의 사양에 합치되지 **않는** 트럭이나 플랫폼 위에 장치된 굴착기계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 레일의 보수나 유지용의 자주식차량은 **제8604호**에 분류한다.

(b) 제87류의 트랙터나 자동차 위에 장치된 기계

(1) 트랙터의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이 호의 기계 작업부분의 어떤 것[예: 지균(地均 : levelling)용 블레이드(blade)]은 트랙터 위에 장치되는 것도 있다. 이 경우의 트랙터는 원래 다른 차량·기기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되어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와 같이 작업기기 조작용의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기기는 수시로 작업에 응하여 사용하는 보조적인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경량(輕量)**이며 사용자 자신에 의하여 작업 현장에서 부착시키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작업기기는 비록 트랙터와 함께 제시한다 할지라도(트랙터에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의 기계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하고 이들 기계의 부분품이 되는 경우 **제843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작업기기의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별도로 제8701호**에 분류한다.

한편 이 호에는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와 그 조작 장치가 서로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주기계가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트랙터와 유사한 주행부로서 이 호에 기재된 여러 가지의 기능[굴착·지균(地均) 등]의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특별히 제작되거나 보강된 것에도 준용한다. 이러한 주행부는 분리하여 제시하더라도 그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불완전한 기계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수개 호에 분류 가능한 주행부는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작업 부분품이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16부의 주 제3호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라서 분류한다.

제8701호의 트랙터와 이 류의 주행부를 구별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기준은 제8701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2) 자동차용 새시나 로리에 장치된 기계

이 호의 어떤 기계[예: 향타기(杭打機)·유정 천공기]는 본질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새시나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용 새시나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 제어장치·조종용과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 자동차로서 **제8705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차륜이 달린 새시에 장치한 기계의 운전실 내에 앞 항에서 설명된 주행용이나 제어용의 장치 중 하나나 둘 이상을 설치한 자주식(自走式) 기계를 포함하는데, 이 기계 전체가 해당 기계의 구동용 원동기에 의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의 차륜이 붙은 기계까지도 포함하는데 이 기계의 새시와 작업기계는 특별히 설계되어 상호 일체 구조의 기계 결합체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작업기계가 앞 항에 설명된 결합기계와 같은 자동차용 새시에 간단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새시에 완전히 일체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새시는 전항에 설명한 기본적인 자동차의 기구를 설치한 것도 있다.

(C) 제89류의 물에 뜨는 구조물에 장치된 기계

부교(pontoon)나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장치된 모든 기계(예: 준설기)는 자력 항해식인지에 상관없이 제89류에 분류한다.

다 기 능 기 계

대개 많은 기계들은 제8429호나 제8430호에 기술된 기능[굴착·지균(地均)·천공 등]을 수행하는 이외에 또한 제8425호·제8426호·제8427호나 제8428호에서 기술된 기능[권양(捲揚)·적하(積荷)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는 제16부의 주 제3호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다. 예를 들면, 탄층절삭과 적탄용 복합기·굴착과 파이프 인양과 하강용 복합기 등이 있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항타기(杭打機 : pile-driver)와 항발기(抗拔機 : pile-extractor)

항타기(杭打機 : pile-driver)는 보통 높고 수직으로 된 가이드 프레임워크(guiding framework) 내에서 작동하는 무거운 해머로 구성되어 있다. 해머는 기계의 힘으로 들어올려져 항의 두부에 낙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낙하는 중력(단동기)이나 에너지(복동기)에 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항발기(抗拔機 : pile-extractor)도 포함한다.

(II)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장비를 내장한 제17부의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차량은 제외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밀거나 끌어서 작동되도록 제작된 스노우플라우(snow-plough) [블레이드(blade)형]는 포함한다(예: 로리나 트랙터에 부착토록 제작된 것).

(III) 채굴용(extracting)·절삭용(cutting)이나 천공용(drilling) 기계

이러한 것들은 주로 채광·우물파기·터널 굴진·암석 절단·점토층 절삭 등에 사용한다.

(A) 석탄·광석 등의 절단용이나 파쇄용의 탄층이나 암층 절삭기 : 이 기계는 피크(pick)를 갖춘 봉(bar)이나 원판(disc)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높이나 절삭 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든 지브(jib)의 주위를 회전하는 엔드리스식의 절삭체인(endless cutting chain)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만능절삭기). 이것들은 자주식(自走式)의 차륜을 갖춘 새시나 무한궤도식 새시에 장치되며 어떤 종류의 것[커터로더(cutter loader)]은 여러 개의 절삭체인을 갖추고 또한 컨베이어·광차(tub) 등에 파쇄된 재료를 적하(積荷)하기 위한 컨베이어를 내장하는 대단히 큰 규모의 것도 있다.

- (B) **터널 뚫는 기계** : 터널굴착용 쉴드(shield)는 부드러운 외측면과 예리한 전면 절삭부를 갖고 있으며 액압 잭장치에 의하여 토양 속으로 추진한다.
- (C) **암석과 탄층 등을 천공하는 기계와 충격식 절삭기** : 이 기계의 드릴은 직접적인 절단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동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원동기를 갖춘 수지공구는 **제외한다(제8467호)**.
- (D) **우물 굴착기와 우물 천공기** : 이 기계는 석유·천연가스·유황[프라쉬법(Frasch process)] 등의 채굴·광석과 석유 발굴을 위한 지층 견본의 채취·아르테시안(artesian) 우물의 굴착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기계에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형이 있다.
- (1) **회전식 우물 굴착기** :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활차(pulley tackle)를 갖춘 데릭(derrick)·동력전달장치와 조작 장치(인장장치)를 갖춘 호이스트(hoist) 드럼 스위블(swivel)과 회전대나 기어휠(gear-wheel)로 구성한다.
- 동력 구동의 인양 장치는 회전대나 기어휠(gear wheel)에 의하여 회전스위블로부터 늘어트린 드릴 파이프에 회전운동을 전달한다. 인양 장치는 필요에 따라서는 활차에 의하여 드릴 파이프를 상하시키기도 한다.
- (2) **충격식 기계** : 이 기계는 편심구동의 요동빔(rocker be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동빔의 시소(see-saw) 운동으로 비트(bit)를 연속적으로 우물바닥에 때려 박는다.
- 이 호에는 천공기**만이**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 천공기와 함께 사용하는 기기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다른 기계로 인정되는 것은 천공기와 함께 제시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천공으로부터 진흙·돌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펌프와 압축기)(**제8413호**나 **제8414호**).
- 기름이나 천연가스와 같이 해저 퇴적물을 발견하는데 사용하는 고정된 플랫폼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부상식(浮上式)이나 잠수식의 플랫폼은 **제8905호**에 분류한다.
- (E) **나선추 천공기** : 이 기계는 지면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서(예: 수목이나 울타리 기둥을 세우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인지에 상관없으나 **제82류**에 해당하는 수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F) **수압쇄기장치** : 이 장치는 길이 방향의 적당한 간격으로 수개의 피스톤(piston)이 측면으로 부착된 긴 원통형태의 배럴로 구성되며 이것을 벌어진 사이나 드릴 구멍에 삽입하고 배럴에 물을 압입함으로써 피스톤(piston)이 압출되어 암층이나 탄층을 부수는 것이다.
- (G) **플라우(plough)·스트리퍼(stripper) 등** : 절삭날·쟁기·곡괭이·쇄기 등으로 구성되며 이것들을 암층의 표면에 따라 동작시켜 석탄·점토 등을 저며내고 컨베이어 등에 적하(積荷)하는 것이다.

(IV)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 (A) **전인되거나 밀리도록 설계된 로드롤러(road roller)** : 이 그룹에는 “sheep's-foot(sheep's-foot)”의 탬핑(tamping)용 롤러가 포함되며 이 기계에는 금속으로 만든 발이 붙어 있어 이것으로 지면을 눌러 다진다. 또한 여러 개의 화물차용형의 차륜이 달린 탬핑(tamping)용 롤러가 포함되는데, 이 차륜은 중량급의 공기식 타이어로서 하나의 공통 차축 위에 장착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서는 자주식(自走式)의 롤러[sheep's-foot(sheep's-foot)나 솔리드 타이어나 공기식 타이어를 부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429호)와 농업용 롤러(제8432호)는 제외한다.

- (B) **탬핑(tamping)용 기계** : 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철도선로용 자갈을 다지는 등의 작업에 사용하며 자주식(自走式)이 아니다. 다만,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67호).
- (C) **제방 등의 측면을 다지기 위한 보통의 압축공기식 기계**

(V) 토양 굴착용·스크레이핑(scraping)용이나 지균(地均 : levelling)용 기계

이들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굴착용 기계** : 제8429호의 해설에 기술된 기계로서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
- (B) **준설기**[버킷(bucket)식이나 셔블(shovel)식] : 제8429호의 멀티버킷(bucket)이 달린 굴착기와 유사한 것이다.
부상식(浮上式) 준설선(floating dredger)은 제외한다(제8905호).
- (C) **철도선로용 자갈을 굴착하면서 체질하는 기계** : 이것은 실질적으로 철도레일 밑의 자갈을 파는 일련의 버킷(bucket)으로 구성되며 자갈을 체로 쳐서 배출하기 위한 기구도 결합하고 있다. 다만, 제86류의 차량 위에 장치되는 기계에 관한 이 호의 해설의 첫 번째의 (a)항을 참조한다.
- (D) **립퍼(ripper)·루터(rooter)와 스카리파이어(scarifier)** : 이들은 도로의 재포장에 앞서 표면의 흙을 부드럽게 한다든가 낡은 노면을 파괴하기 위한 절삭용 날을 갖추고 있다.
- (E) **스키머(skimmer)** : 이것은 수평 붐(boom)을 갖춘 제8429호의 것과 유사한 굴착 셔블(shovel)의 형으로서 표면의 흙을 스킴(skimming)하는데 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강력한 워터제트를 분사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채굴하도록 설계된 수압총 (**제8424호**)
- (b) 농업용 롤러 : 비교적 직경이 작은 길고 가벼운 지면용 롤러를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형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도 있다(**제8432호**).
- (c) **제8467호**의 수지식 동력공구[예: 픽(pick)·탬퍼(tamper)와 천공기(drill)]
- (d) 바위나 콘크리트의 절단용이나 천공용의 기기로서 산소의 분사로 철강을 태워서 얻어진 고온을 이용하는 것(**제8479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430.31호와 제8430.39호

이 소호에는 제8430호 해설서(III)의 (A), (B)와 (G)항에 규정한 기계를 포함한다.

84.31 -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8431.10 - 제8425호의 기계의 것
- 8431.2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 제8428호의 기계의 것
- 8431.31 --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 8431.39 -- 기타
 -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
- 8431.41 -- 버킷(bucket)·셔블(shovel)·그랩(grip)과 그립(grip)
- 8431.42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 8431.43 --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 8431.49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품은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a)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 예: 서스펜션 스프링(제7320호)·엔진(제8407호나 제8408호 등)과 전기식의 점화용과 시동용 기기(제8511호)
- (b) 자동차용에 사용하는 부분품과 동일하고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품은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8708호); 특히 차륜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이들에 해당한다.
- (c) 보울(boule)·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제8486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권양(捲揚)용의 그랩(grip)·버킷·그립(grip) 등, 즉, 링·혹 등을 갖춘 간단한 권양(捲揚) 버킷; 개폐식 저부를 갖춘 버킷; 가루 형태 원료의 권양(捲揚) 작업을 위하여 개폐하는 두 개의 결합된 셸(shell)로 구성되는 그랩(grip); 돌·암석 등을 다루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조합된 블레이드(blade)나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갖춘 그립(grip)

금속 스크랩(scrap)의 취급용 전자식(電磁式) 권양(捲揚) 헤드도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05호)**.

- (2) 윈치(winch)와 캡스탠(capstan)용의 드럼 ; 크레인 지브 ;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 · 크랩 · 버킷(bucket)과 스킵 등 ; 리프트용 등의 캐빈 · 케이지 · 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킷(bucket)과 스크레이퍼(scraper) 체인 ;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motor)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등의 안전 정지장치
- (3) 절단기용의 커터 바(cutter bar) · 체인과 지브(jib) ; 스크레이퍼(scraper)의 블레이드(blade) · 석탄용 플라우와 스트리퍼 등
- 이 그룹에는 또한 제87류의 차량에 붙이는 작업기구로 장치하기 위한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용 블레이드(blade)를 포함한다.
- (4) 우물천공기(회전식이나 충격식)의 회전대 · 스위블(swivel) · 켈리(kelly) · 켈리드라이브 부싱 · 공구연결구 · 드릴칼라(drill collar) · 서브(sub) · 드릴파이프가이드 · 스톱칼라 · 스파이더 볼(bowl) · 스플릿부싱슬립(split bushing slip) · 빔 · 스위블소켓 · 드릴링자(drilling jar)
- (5) 굴착기용의 굴착버킷과 그랩 · 멀티버킷식 굴착기의 버킷이 붙은 사다리 ; 기계식 셔블(shovel)용 지브(jib) ; 향타기의 해머
- (6) 무한궤도식이나 차륜이 달린 새시 : 비자주식(自走式)의 것으로 스위블(swivel) 기어나 그 밖의 회전 장치와 함께 부착되어 있다.

부착물(예: 케이블클립 · 링 · 훅과 스프링 훅)을 갖춘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하며, **분리되어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의 **제15부**(보통 **제7312호**나 **제7315호**)에 분류한다. 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의도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 본체[윈치(winch) · 텔레페릭(teleferic) · 크레인 · 인양기를 작동시키는 케이블 · 드래그라인(dragline) · 굴착기 등]와 함께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부착물을 갖추지 않고** 또한 코일 모양으로 제시된 체인과 케이블은 해당 부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도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 · 가황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 가죽으로 만든 것(**제4205호**)이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제5910호**)
- (b) 슬링(sling)(**제11부**나 **제15부**)
- (c) 중공(中空) 드릴봉(**제7228호**)
- (d) 케이싱 · 관(管 : tubing)과 드릴 파이프(**제7304호부터 제7306호까지**)
- (e) 조절할 수 있거나 신축식의 경도지주(**제7308호**)
- (f) 리프팅 훅(**제7325호**나 **제7326호**)
- (g) 착암용 비트(bit)와 끌 · 보링비트(boring bit) · 오오거비트(auger bit)와 이와 유사한 착암용이나 토양 천공용 공구(**제8207호**)
- (h) 여객과 화물용 리프트 등의 자물쇠(lock)(**제8301호**)
- (ij) 풀리(pulley) · 풀리블록(pulley block)과 베어링 하우징(bearing housing)(**제8483호**)

84.32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 8432.10 - 플라우(쟁기)
 -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 8432.21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 8432.29 -- 기타
 -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 8432.31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 8432.39 -- 기타
 -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 8432.41 -- 퇴비 살포기
- 8432.42 -- 비료 살포기
- 8432.80 - 그 밖의 기계
- 8432.90 - 부분품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작업의 한 중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즉 :

- (I) 경작용 토양의 정지작업[제거하는 것·부순 것·경작·쟁기질·쇄토(loosening) 등]
- (II)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살포작업
- (III) 식수(植樹)나 파종(播種)하는 것
- (IV)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이나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제초·청소 등)

*
* *

이 호에 해당되는 기계는 동물이나 차량(예: 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차량(예: 트랙터나 말)에 의하여 견인되는 새시)에 장치되어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 “트랙터(tractor)”에는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single axle tractor)”를 포함한다].

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트랙터에 교환기로서 장치되도록 설계된 기계

어떤 종류의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예: 플라우(쟁기)와 하로우(쇄토기)]는 전적으로 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결합장치(리프팅 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트랙터에 접속된다. 그 밖의 기기(예: 회전식 가래)에는 트랙터에 부착된 범용(汎用)성의 동력 전도(傳導 : take-off)장치에 의하여 조작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기기는 전답·임야나 농장에서 장치되거나 교환된다. 이러한 기기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하였더라도 (트랙터에 장치되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모두 이 호에 분류하며 트랙터 본체는 분리하여 **제8701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류 원칙은 트랙터를 다른 형식의 견인 장치(예: 제8704호에 분류하는 것)로 대신한 경우나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의 차륜부의 구동축에 차륜 대신에 회전식 가래를 장치한 경우(해당 가래는 작업도구의 역할과 전체를 운반하는 구동차륜의 역할도 한다)에도 적용한다.

자주식(自走式)의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

이러한 기계는 견인부와 작업기계가 일체 구조의 기계로 제작된다(예: 동력구동 플라우). 이러한 기계들은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705호의 그 밖의 특수용도 자동차와 함께 분류하는 비료 등의 살포용 로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
* *

인력으로 견인되거나 굴러가도록 설계된 비교적 소형의 농업용 기계[예: 쟁기(plough)·쇄토기(harrow)·컬티베이터(중경기)·호우(hoe)·롤러와 파종기(seeder)]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토양작업용 **플라우(쟁기)** : 예를 들면, 몰드보드(mouldboard) 플라우[한 개의 날이나 여러 개의 날로 된 것과 호환용(reversible)식]·심경용 플라우(보통 몰드보드가 없다)와 원반식 플라우가 있다.
- (2) **하로우(쇄토기 : harrow)** : 쟁기질 후 토양의 파쇄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톱니가 달린 하로우**에 있어서는 톱니가 고정식·관절식이나 체인식의 틀에 부착되거나 때로는 드럼이나 롤러에 부착되어 있다. **디스크 하로우**의 경우에는 톱니 대신으로 절단용 날을 갖춘 요(凹)면 원판의 하나 이상의 열이 부착되어 있다.
- (3) **스카리파이어(scarifier)·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hoe)** : 쟁기질 후나 작물생산기간 중의 토양의 정리·제초나 지균(地均 : levelling)용으로 사용한다. 보통 여러 가지 형태의 틀(날·원판·톱니 등)을 여러 개의 열로 부착시킨 수평 틀로 구성되며 틀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탄력있게 부착되고 고정식이나 가동식의 것이 있으나 때로는 교환식의 것도 있다.
- (4) **파종기·식부기(植付機 : planter)·이식기(移植機)** : 구근(bulb)·괴경(tuber)·묘목 등을 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상자·호퍼(hopper)나 그 밖의 용기로 구성되며, 때로는 차륜 위에 장치되어 있고, 배포용 장치와 보통 구덩이를 파거나 메우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그룹에는 경운(耕耘)으로 토양을 갈지 않고 농작물을 파종하는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를 포함한다. 이들은 사전에 계량된 수량의 종자를 뿌리고 깔린 짚(surface mulch)과 식물의 잔유물에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경운하지 않은 토양에 퇴적시킨다. 이 때 토양에 좁은 통로를 내거나 구멍을 뚫으면서 종자를 사전에 결정된 위치와 깊이로 보낸다.

- (5) **비료 배포기(fertiliser distributor)와 퇴비 살포기(manure spreader)** : 퇴비나 고품 비료(화학비료·분뇨 등)의 살포용 기계로서 때로는 차륜에 장치되어 있고, 보통 활동상판·웜 피드(worm feed)·엔드리스 체인이나 원심 회전판과 같은 배포장치를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휴대식 기계장치도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

비료 살포기는 화학 비료나 그 밖의 합성 고체 투입물을 토양에 골고루 뿌려준다. 퇴비 살포기는 “동물 웨이스트(animal waste)”로부터 나온 퇴비(똥)나 재활용 식물 영양요소를 논밭에 골고루 뿌려준다.

바다이동식 트레일러로서 퇴비의 세단용과 살포용의 착탈식 부착물(attachment)이 부착되어 있어서 퇴비를 차에서 내릴 때 비료살포기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과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로 구성되는 액체비료살포기로서 보통 살포용 판이나 흡통을 갖춘 것은 제8716호에 분류한다.

액체비료를 토양 속으로 주입시키는 휴대식 주입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주입기는 길다란 중공(中空) 봉(rod)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하여 비료는 펌프에 의하여 토양 속에 주입한다.

- (6) 관목·하초(下草 : undergrowth)·전작(前作 : former crop)의 줄기·뿌리 등을 제거하는 기계 : 일반적으로 두 개의 대형 차륜과 커팅블레이드(cutting blade)가 부착된 드럼으로 구성한다.
- (7) 제석기(除石機 : stone-removing machine) : 하로우(쇄토기 : harrow)와 유사한 것이나 돌이 수집되도록 갈퀴세트가 뚜껑이 없는 용기에 향하여 2열로 배열되어 있다.
- (8) 롤러(roller) : 주로 땅을 다지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평활한 것·물결 모양의 것·원반 모양의 것과 패커휠(packer wheel) 등의 롤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정원용·잔디용·운동장용과 잔디트랙용 등의 롤러가 포함한다.
- (9) 묘중내는 기계(thinning-out machine)(예: 비트분열기) : 어린 식물을 분리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발전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매우 복잡한 기계도 있다.
- (10) 농작물의 선단이나 줄기를 전정하는 기계 : 과일 성장분을 가지치기하는데 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특히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플라우(쟁기)의 자루·날·판 모양의 날·경토판·플라우디스크(다이아몬드를 단부에 부착시킨 판 모양의 날·디스크 등을 포함한다) ; 교토·경작과 제초기용의 고정식이나 스프링식 톨과 치(teeth) ; 하로우(쇄토기)용의 치(teeth)·드럼과 디스크 ; 롤러용의 실린더(cylinder)·세그먼트와 부분품 ; 비료살포기·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등의 배분장치 ; 가래질 기계용의 판상날·치(teeth)·디스크와 그 밖의 공구류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이식도구·식부기(植付機)·이식기(移植機)·그 밖의 유사한 수공구류(**제8201호**)
- (b) 액체 엘리베이터와 액체 펌프[농업용 기계의 차륜 위에 장치되어 분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허브펌프(hub-pump)를 포함한다](**제8413호**)
- (c)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이나 분무용으로서 기계식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의 기구(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제8424호**)
- (d) **제8428호**의 퇴비용 리프터(lifter)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의 리프팅기
- (e) 자주식(自走式)의 셔블로더(shovel loader)와 로드롤러(**제8429호**)
- (f) 토양 굴착용·지균(地均 : levelling)용·천공용이나 채굴용 기계와 비(非)자주식(自走式)의 로드 롤러(**제8430호**)
- (g) 그루터기 제거기와 식목용 이식기(**제8436호**)
- (h) 농업용 수레(cart)와 차량(**제87류**)

84.33 -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33.19 -- 기타

8433.2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8433.3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8433.40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8433.51 -- 수확·탈곡 겸용기

8433.52 -- 그 밖의 탈곡기

8433.53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8433.59 -- 기타

8433.60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8433.90 -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공구 대신으로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A) 농작물의 수확기[예: 예취(reaping)·채취(croplifting)·수집(gathering)·적취(picking)·탈곡(threshing)이나 결속(binding 또는 bundling)]. 풀 베는 기계·짚이나 건초 결속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B)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제8432호 해설규정은 이 호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예: 수확용·탈곡용·초예용이나 그 밖의 교환식의 부착물(attachment)이 부착된 트랙터와 동력식 갈퀴].

(A)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이들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잔디 깎는 기계** : 수동식의 것인지 동력구동식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이것은 농업용 초예기와 같은 커터 바(cutter bar)를 갖는 것도 있고, 회전 칼날이 고정된 수평 칼날이나 바깥 가장자리에 칼이 붙은 회전운반에 맞대여 풀이 베어지는 것도 있다.
- (2) **풀 베는 기계(모터식 풀 베는 기계를 포함한다)** : 이것은 보통 수평의 커터 바(cutter bar)와 섹션(section)으로 구성되고, 커터 바의 핑거 사이에 있는 톱날의 진동 운동에 의하여 풀이 베어지게 되며 이것은 바깥 가장자리에 칼날이 붙은 회전 원반이나 드럼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 (3) 베어낸 농작물을 들판에 배열하여 나가는 장치를 갖춘 **풀 베는 기계** [모어윈드로어(mower-windrower)와 모어컨디셔너(mower-conditioner)]
- (4) **건초기(hay tedder)**(예: 권양(捲揚)용 포크나 드럼이 붙은 것)
- (5) **건초용 갈퀴(hay rake)** : 보통 반원형갈퀴의 윤열로 되어 있으며 건초가 자동적으로 들어 올려진다.
- (6) **건초기용 갈퀴(tedder rake) · 보릿단 수집기용 갈퀴(windrower rake) · 결속용 갈퀴(bundling rake)**
- (7) **픽업(pick-up) 베일러와 베일플러** : 농지 위에 놓인 건초와 짚을 주어 모아 결속하는 기계
- (8) **콤바인 수확기(combine harvester)** : 연속하여 곡물의 예취 · 탈곡 · 청정과 방출하는 것
- (9) **옥수수 예수기 · 채취기 · 수확기와 껍질 까는 기계**
- (10) **수확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자체적재 트레일러(self-loading trailer)**로서 목초 · 옥수수 등의 절단 · 수송용에 사용하는 것
- (11) **면화 채취기**
- (12) **아마 채취기**
- (13) **포도 수확기**[끄는 식이거나 자주식(自走式)의 것]
- (14) **채소 수확기**(콩류 · 토마토 등)
- (15) **감자캐는 기계**(쟁기날형 · 포크형 · 그릴형)
- (16) 비트(beet)와 이와 유사한 뿌리 작물용의 **뿌리윗부분 제거기 · 뿌리 캐는 기계와 뿌리 수확기**

(17) 사료(forage) 수확기

(18) 나무 흔드는 기계(tree shaker)

(19) 그 밖의 농산물용의 수확기(채유용 종자 등)

(20) 곡물의 탈곡기(grain thresher) : 이 호에는 또한 단독으로 제시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자동탈곡기 공급 장치도 포함한다(즉, 다발을 풀고 전개하여 작물을 탈곡기에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보조기계이다).

(21) 옥수수로부터 잎사귀를 제거하는 기계 ; 옥수수 탈곡기

이 호에는 승차 조종식 잔디 깎기로 알려진 잔디 깎기를 분류하며, 이것은 바퀴가 세 개나 네 개 달린 기계로 구성되며 운전석을 갖추었고 고정적으로 부착된 커터(cutter)를 갖고 있다[커터는 단지 수리나 정비할 때에만 대체된다]. 이들의 주 기능은 잔디를 깎는 것이므로 트레일러와 같은 가벼운 부착물을 끌거나 미는 연결 기구를 갖추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잔디를 깎아 다듬는 것, 담장이풀·정원의 꽃밭이나 덩불숲의 절단용으로 쓰는 휴대용 기계는 제외한다. 이들 기계는 가벼운 금속 프레임 속에 내연기관을 갖추었거나 금속 핸들에 전동기를 장치하였으며, 절단장치는 보통 한 개 이상의 가는 나일론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제8467호에 분류한다.

(B)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이 호에는 원예용·농업용이나 공업용의 형태의 어느 것이든 간에 새의 알·과실·감자·양파·구근·당근·아스파라거스와 오이와 같은 농산물을 크기·모양·무게 등에 따라서 세정·분류나 선별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도 분류한다. 이들 기계는 전기적 작동식(예: 광전식(光電式)의 테스트기와 선별기)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이들은 또한 보조 장치(예: 새의 알 검사용이나 생산 표시용)를 갖춘 것도 있다.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는 제외한다(제8437호).

*
* *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예: 수확기·콤바인·탈곡기·결속기·결속용 프레스(press)·선별기] 중에는 작물의 권양·취급·운반 등의 보조 장치[예: 컨베이어벨트·다발이나 짚의 적하(積荷)기·버킷(bucket) 체인]과 결합된 것도 있으며 ; 이들이 본체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기계 본체와 같이 이 호에 분류하고 ; 단독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제8428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하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풀 베는 기계나 수확기용의 커터 바(cutter bar)와 도구류를 들어 올리는 장치와 핑거(finger) ; 잔디 깎는 기계나 풀 베는 기계의 커터 바(cutter bar)에 동력을 전달하는 진동식 연결봉 ; 수확 결속기용의 분별기·디바이더·갈퀴·플랫폼과 결속기구 ; 건조장치 ; 커터 보드 ; 복합수확기나 탈곡기용의 비터(beater)·카운터-비터·쉐이커·짚배출기 등 ; 감자나 그 밖의 근채(根菜)작물을 캐는 기계의 날·치(齒 : teeth)·포크와 그 밖의 공구류 ; 건조 건조기용의 드럼과 포크 ; 수집기용의 이(齒 : teeth)과 장치를 들어 올리는 기구 ; 수집기나 결속기용의 픽업(pick-up) 레이크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 (a) 초예기용의 절단 날과 그 날의 섹션(제8208호)
- (b) 다발·짚류나 백용의 호이스트(hoist) ; “송풍기형(blower type)”의 건조나 짚용의 엘리베이터 ; 버킷이나 압축공기식 곡물 엘리베이터 ; 농업용 크레인이나 그 밖의 적하(積荷)용·권양(捲揚)용·취급용이나 운반용 기계(제8426호나 제8428호)
- (c) 수목의 벌채나 뿌리를 뽑는 기계·농장형 짚 절단기·근채(根菜) 절단기·곡물 분쇄기와 알 검사기(제8436호)
- (d)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와 제분 공업에서 사용하는 기계(제8437호)
- (e) 조면기(제8445호)
- (f) 담뱃잎을 스트리핑(stripping)하거나 커팅하는 기계(제8478호)

84.34 -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 - 착유기

8434.20 - 낙농기계

8434.90 - 부분품

이 호에는 농장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밀크의 처리나 밀크를 낙농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식 착유기와 그 밖의 기계류를 분류한다.

(I) 착유기

착유기(milking machine)는 송이 모양의 유두용 컵(각기 고무로 만든 라이너를 갖추고 있다)으로 구성되며 이것의 한쪽은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에 의하여 맥동기를 경유하여 진공 펌프장치에 접속되고 다른 한쪽은 밀크용기(보통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에 접속된다. 맥동기(pulsator)는 밀크용기의 뚜껑에 부착되어 컵과 라이너간의 상대적인 진공과 공기압을 교호적으로 변화시켜서 유두용 컵에 작용한다. 송이모양의 유두컵·맥동기로 형성된 집합체는 착유용기 “밀킹페일(milking pail)”이라고 불린다.

소용량의 착유기에 있어서는 착유용기와 진공펌프장치가 동상(同床)에 놓여있는 것도 있다 [일조식이나 이조식 착유기(single or twin-pail machine)].

대용량의 착유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구성 부분이 보통 분리되어 있다. 많은 종류의 밀크 용기는 관(piping)으로 진공펌프에 접속되어 있다. 어떤 형의 것은 밀크용기가 없고 착유된 밀크를 유두용 컵으로부터 파이프 라인에 의하여 냉각장치나 저장탱크(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다)에 직접 보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것으로는 자동 착유 시스템인 착유로봇(milking robot)이 있다. 자동 착유에 필요한 모든 장비, 특히, 민첩한 로봇 팔·전자장치·진공펌프·압축기·세척기·밀크 계량기 등을 합체한 자동 착유 시스템은 젖소가 자발적인 상태에서 착유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각 젖소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트랜스폰더(transponder)가 부착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그 시스템이 젖소가 착유준비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착유는 밀크추출장치가 젖소의 유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레이저 영상 시스템이 장착된 로봇 팔이 수행한다.

이러한 기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기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4호(제16부 총설 참조)에서 정의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착유기능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기기(필터·냉각장치·저장탱크·유두용 컵과 파이프라인 등의 청정용기기)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각각 열거된 호에 분류한다.

(II) 우유처리기

이 그룹에는 **균질기(homogeniser)**를 포함한다. 균질기는 지방을 미세입자로 부숨으로써 보다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크림화하지 않고 보다 오랫동안 유화 상태를 보존시킨다.

우유처리용의 대부분의 기계는 본질적으로 열처리의 원리에 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예: 저온살균이나 소독용 기계·우유의 농축용이나 건조용 기계와 ; 우유냉각기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냉장기구(우유의 냉각용이나 보존용으로 제작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와 우유냉각용 통으로 냉장기구의 증발기를 결합하고 있는 것(제8418호)
- (b) 크림분리기·필터프레스(filter)와 그 밖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기기(제8421호)(다만, 간단한 여과용 깔때기와 우유의 여과기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c) 우유용기의 세정기와 우유의 병주입기와 통조림기(제8422호)

(III) 우유로부터 다른 낙농품을 제조하는 기계

크림분리기(cream separato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21호). 그러나 이 호에는 보통 버터나 치즈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버터 제조기(butter-making machine)

- (1) **교유기(churn)** :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제의 통으로 구성되며 그 내부에 수많은 격벽이나 블레이드(blade)가 있다. 통(barrel)이나 블레이드(blade)는 원동기에 의하여 회전되며 타격동작의 결과로 크림이 거품으로 경화(硬化)되고 점차 버터로 전환된다.
- (2) **교유와 완성가공용의 복합기** : 이 기계는 버터를 연속 생산하는데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크림을 버터로 변형하는 고속회전 요소와 실린더(cylinder)를 구동하는 전기모터(motor)로 구성되어 있다. 버터는 연속되어 있는 기계의 작업 요소를 통과하면서 압력을 받게 된다.
- (3) **버터성형기(成形機)** : 소정의 상업용 모양으로 성형하는 기계이다. 그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증량을 측정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22호와 제8423호)**.

(B) 치즈제조기(cheese-making machine)

- (1) 연성 치즈나 크림 치즈의 제조에 있어서 커드(curd)와 크림(cream)의 혼합물을 **부수어 균질화하는 기계**
- (2) 경성과 반경성 치즈와 연성 치즈나 크림치즈의 **성형기(成形機)** : 다만, 제품을 포장하거나 중량을 측정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제8422호와 제8423호)**.
- (3) **치즈프레스(cheese press)**(예: 기계식·압축공기식 등) : 특히 경성 치즈의 제조에 있어서 제품의 성형과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
* *

낙농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많은 기계와 장치가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장용·숙성용·가공용 등의 용기와 탱크로서 이들의 조작이 **제8418호나 제8419호**에 분류하는 가열이나 냉각장치에 부착이 가능한 것(교반기 등과 같은 기구장치를 결합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가열이나 냉각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교반기·경사(tipping) 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용기 등이 낙농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만약 이들의 특정 용도에 대한 전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가열장치나 기계장치의 어느 한 가지도 부착되지 않는 용기 등은 각각 구성 재료에 의한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7309호·제7310호·제7419호·제7611호·제7612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착유기계용의 용기·뚜껑·맥동기(pulsator)·유두용 컵과 장작품[고무로 만든 라이너 등은 **제외**되며(**제4016호**)] ; 버터 교유기용 통 ; 버터완성가공기계의 롤러와 테이블 ; 버터와 치즈의 성형기(成形機)용의 형(mould)

*
* *

제8210호나 제8509호에 분류하는 가정용(domestic) 기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84.35 - 포도주 · 사과술 · 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 · 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 - 기계

8435.90 - 부분품

이 호에는 포도주 · 사과술 · 배술 · 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발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농업용과 공업용의 기계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상업용 기계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과실주스추출기** : 수동이나 동력 조작식의 것으로서 발효시키지 않은 과실주스를 추출하기 위한 기계이다(예: 감귤류 · 복숭아 · 살구 · 파인애플 · 딸기나 토마토의 주스).
- (B) **사과나 배의 파쇄기** : 수동이나 동력조작식의 것으로서 잘게 갈아내는 기구나 파쇄 실린더(cylinder)에 과실을 공급하는 호퍼(hopper)로 구성되어 있다.
- (C) **사과주용의 기계나 액압 프레스(press)** : 차륜이 달린 트롤리에 장치된 이동식 프레스(press)도 포함한다.
- (D) **포도의 프레스(press)용이나 파쇄용 기계**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포도파쇄기** : 보통 홈을 갖춘 두 개의 실린더(cylinder)나 비터(beaters)를 갖춘 단일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되며 씨나 줄기를 부수지 않고 포도에서 주스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발효조 내에 추출된 주스를 보내기 위한 펌프를 결합한 펄핑기(연한 과육채취기)도 포함한다.
 - (2) **신선하게 프레스(press)된 포도에서 주스(포도액)을 분리해 내는 기계** :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비터를 갖춘 천공된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은 압착과 줄기의 제거 작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
 - (3) **프레스(press)** : 파쇄된 포도과육이나 발효조의 잔재물로부터 잔존주스를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주된 형이 있다.
 - (i) **불연속적인 기계식이나 액압식 프레스** : 주스를 수집하도록 용기 속에 지지된 호환성의 격자형의 케이지("claire") 속에서 프레스헤드로 과육을 파쇄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보통 트롤리 위에 장치된 일련의 용기("maie")에 주스를 채울 수 있도록 설계된 액압식 문형의 프레스를 포함한다.
 - (ii) **연속프레스** : 엔드리스 스크루(endless screw)에 의하여 운반되어 온 포도를 프레스하는 것이다.

(E) **분쇄기나 파쇄기** : 압착하고 남은 찌꺼기의 덩어리를 다시 프레스(press)하는 전 공정에서 그 덩어리를 부수는데 사용하며 이(齒)를 갖춘 실린더(cylinder)나 회전블레이드(blade)가 부착되어 있다.

주스·포도즙·포도주·사과술과 배술의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를 **제외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냉각기·소독기·살균기나 농축기(**제8419호**)

(b) 원심분리기·필터프레스(press)와 그 밖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의 기계장치(**제8421호**)(다만, 간단한 여과용 깔때기는 각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제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스추출기용 파쇄실린더(cylinder) ; 사과 파쇄용의 치(齒)를 갖춘 실린더와 격자 ; 포도의 프레스나 줄기 제거기용의 실린더 ; 특수한 과육용기(“claire”)나 포도주용 프레스의 베이스 플레이트형 과즙수집접시(“maie”) ; 포도주용 프레스 등의 스크루 헤드·프레스 플레이트(pressing plate)와 프레임 ; 찌꺼기 파쇄기용 등의 치간을 갖춘 실린더와 블레이드(blade)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4419호·제8210호나 제8509호**에 분류하는 형의 과즙추출기

(b) 포도주·과실주스·사과주 등에 사용하는 펌프(전용인지에 상관없다)(**제8413호**)

(c) 찌꺼기로부터 포도주를 분리하기 위한 원심분리기(**제8421호**)

(d) **제8422호**에 해당되는 병주입기·코르크전봉입기와 그 밖의 기계류(통세정용의 증기분사장치 등을 포함한다)

(e) 과실용 컨베이어(**제8426호나 제8428호**)

(f) 과실박피기와 심제거기(**제8438호**)

84.36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8436.1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8436.21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8436.29 -- 기타
- 8436.80 - 그 밖의 기계
 - 부분품
- 8436.91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 8436.99 -- 기타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시장판매용 과채류 재배원(market garden)·가금(家禽)사육장이나 양봉장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기계는 **제외한다**.

(I)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 발아용 기기

이들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종자용 분말도포기** : 보통 회전하는 금속으로 만든 드럼과 이곳에 종자를 공급하는 한 개 이상의 호퍼(hopp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드럼 속의 종자에 살균제나 살균성의 가루를 도포한다.
다만, 분말살포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4호)**.
- (B) **비료파쇄기나 혼합분쇄기**
- (C) **포도넝쿨이나 과수 등의 가지절단기**
- (D) **수목올타리 절단기**
- (E) **사료 등의 조제용 기기** 등.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유박(oilcake) 파쇄기**
 - (2) **양배추 절단기**와 그 밖의 녹색 잎 채소 절단용 기기
 - (3) 비트(beet)·순무·당근·사료 등의 **박편기와 파쇄기**

- (4) **짚·건초와 사료의 절단기**[사일로(silo)로 운반하기 위한 컨베이어가 결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 (5) 귀리·대맥 등을 조제하기 위한 **파쇄기**
- (6) 밀·옥수수·대맥과 그 밖의 사료의 **농장용 분쇄기 ; 농장용의 제분기**
- (7) **사료혼합기**
- (F) 소·말·돼지 등 사육을 위한 **자동급수기** : 예를 들면, 돌쩌귀로 붙인 판을 갖춘 금속으로 만든 물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의 콧등에 의하여 눌러지면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
- (G) 동물용의 **기계식 털깎기(clippers)**
보통의 수지식 헤어클리퍼는 **제외한다(제8214호나 제8510호)**.
- (H) **임업용 기계** : 이러한 기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유압 잭(jack)의 작용에 의하여 줄기를 잡아 뿌리째 뽑아 올리는 조(jaw)를 갖춘 **나무뿌리 뽑기기계(tree uprooter)**
 - (2) 유압구동식 전단도(剪斷刀 : shear)나 톱을 갖춘 **수목벌채기**(가지 떼내기 등을 하는 장치나 나무줄기를 운반하거나 쌓기 위한 포착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트랙터에 장치하도록 제작된 벌채기[뿌리를 절단하기 위한 플라우와 트랙터의 작업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축성이 있는 붐(boom)을 가진 것]
 - (3) 흙이 묻은 채로 굴근할 수 있는 블레이드(blade)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수목 이식기**
 - (4) 원반형 칼에 의하여 지면 하의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의 그루터기를 해체할 수 있는 **나무 그루터기 제거기**
 - (5) **가지·작은 가지 등을 잘라내는 기계**로 칩핑 블레이드(chipping blade)를 사용해서 가지 치기 등을 한다. 칩(chip)은 송풍장치로 배출한다.
- (I) **발아장치(예: 발아기)** : 기계적인 장치[예: 펌프·원동기나 팬(fan)]나 가열장치를 갖춘 것이라야 하며 이러한 장치가 없는 간단한 상자는 **제외한다**(구성 재료에 의하여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뿌리의 박편기·짚 절단기용 등의 블레이드(blade)와 나이프(**제8208호**)
 - (b) 온도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기계장치(**제8419호**), 예를 들면, **제8419호**에는 건조건조기·감자나 사료 등의 고압술을 포함한다. 그러나 열원장치가 있는 발아기·부란기나 양육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
 - (c) 액체나 가루의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제8424호**)

- (d) 공기식이나 블로어(blower)식의 엘리베이터 ; 수목·통나무 등의 뿌리를 뽑거나 끌거나 적재하기 위한 윈치(winche) ; 그 밖의 권양(捲揚)·취급이나 운반용의 장치(제8425호·제8426호나 제8428호)
- (e) 나무심기용 구덩이를 파는 기계 ; 벌목용이나 개간용의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제8429호나 제8430호)
- (f) 공업용의 사탕무박편기(sugar beet slicing machine)(제8438호)
- (g) 제8439호의 우드칩(wood chip) 절단기계
- (h) 물분사식(water-jet) 박피기(bark stripper)(제8424호)와 목재를 박피하는 기계(제8465호나 제8479호)
- (ij) 목재가공용의 공작기계(제8465호나 제8467호)
- (k) 진공청소기 형태의 말이나 소의 털 손질기(제8508호)
- (l) 통나무 운반용(통나무 집재기)으로 특별히 제작된 트랙터(제8701호)
- (m) 기계식 분만보조 기구(calfing aid)(제9018호)
- (n) 우박 방지총(제9303호)

(II)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부란기(incubator)** : 이 기계는 그릇 속에 있는 알(egg)이 온도, 공기흐름, 공기습도가 정확하게 제어되는 대기에서 자동적으로 회전되게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기계는 부란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개인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가동되기도 한다. 콤비 부란기로 알려진 일부 부란기는 부화기능을 갖추고 있다.
- (B) **부화기(hatcher)** : 난방과 공기순환을 통제하는 장치를 갖춘 이 기계는 바구니나 특수 그릇 속에 있는 새의 알이 부화하도록 한다.
- (C) **양육기(brooder)** : 난방과 냉방 장치를 갖춘 대형기기로서 어린 병아리의 사육에 사용한다.
- (D) **사육·산란장치나 “배터리(battery)”** : 사료상자에 사료를 공급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알(egg)을 수집하기 위한 자동장치를 갖춘 대형의 장치이다.
- (E) **검란기(egg candler)(또는 검사기)** : 기계적인 것(광전식 검사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정치검사용 램프는 제외한다.
또한 선별이나 분류 기구를 갖춘 기계는 제외한다(제8433호).
- (F) **자웅감별과 예방접종 장비** : 부화장에서 병아리(chick)를 성별에 따라 분리하며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계는 외과 수의사가 사용하도록 제작되지는 않았다.

이 호에는 병아리(chick)를 자동적으로 세어 상자에 넣는 작업을 하는 병아리 집계와 상자포장(boxing) 시스템의 기계를 포함하지 않으며(제8422호) ; 병아리를 취급하는 것이 주기능이며 집계하는 것은 단순히 상자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정해진 고정된 숫자의 병아리를 상자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부차적인 기능이다.

(III) 양봉용의 기계

(A) 벌꿀 프레스(honey press)

(B) 벌집의 기초를 왁스로 형성하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 (a) 벌통(구성재료에 의하여 분류한다)(보통 제4421호)
- (b) 벌집을 재용해하는 온탕조 : 프레스(pressing)용 스크루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제8419호).
- (c) 원심식의 벌꿀추출기(제8421호)
- (d) 제8424호에 분류하는 액체나 가루의 분무기나 연기 분출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84.37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8437.80 - 그 밖의 기계

8437.90 - 부분품

(I)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이 호에는 원예용·농업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곡물·채두류(菜豆類)·종자 등을 키질·송풍·체질 등에 의하여 세정·선별·분류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분류한다.

- (1) **패닝밀(fanning mill)** : 공급호퍼(feeding hopper)·송풍기와 체(진동형의 것이 많다)로 구성되어 있다.
- (2) **분급풍선기·회전풍선기와 종자나 곡물의 선별기** :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청정하고 종자나 곡물의 무게·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분급(grade)하는 보다 복잡한 기계이다. 어떤 종자 선별기에는 종자에 가루 살충제를 코팅하는 보조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 (3) **벨트형의 체** : 사탕무 종자의 청정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급호퍼의 하부를 엔드리스의 경사진 벨트가 회전하도록 만든 일련의 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종자는 자유롭게 벨트의 하부로 굴러 떨어지고 가벼운 식물성 찌꺼기는 직물 벨트의 벨벳 상태의 표면에 부착한다.
- (4) **재배용 종자의 선별용(selecting and grading)의 특수기계**

이 호에는 또한 제분에 앞서 곡물의 세정용·분류용이나 선별용으로 사용하는 제분 공업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에는 앞에서 설명된 키질·체질과 선별용 기계와 같은 원리에 의한 것도 있으나, 그러나 어떤 것은 대량생산용으로 설계되고 또한 제분업용으로 전용화된 것도 있다. 그 예를 들면,

- (1) 곡물 청정용의 **사이클론 분쇄기(cyclone separator)**
- (2) 포켓을 갖추었거나 천공된 드럼의 회전에 의하여 **세정이나 선별하는 기계**
- (3) 진동식 체를 갖춘 **흡인식 분리기(aspirator separator)**

(4) 자기(magnetic)나 전자기적(electro-magnetic) 형태의 **분리기와 분류기**

(5) **세정기·돌의 제거기와 “원심탈수(whizzing)”기계** : 보조건조 컬럼(column)을 갖춘 것인 지에 상관없다.

(6) **곡물브러시기**

(7) **곡물가습기** : 가열장치나 계량장치를 결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세정·분류와 선별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기와 전자기식 분리장치와 결합된 기계도 포함한다.

(II) 제분업용 기계

제분에 앞서 곡물의 세정용·선별용이나 분류용 기계(위의 (I)을 참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제분공업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A) **제분에 앞서 곡물의 혼합이나 조제용의 기계, 예를 들면,**

(1) 미리 설정된 양의 **곡물을 혼합하는 기계**

(2) 고무실린더(cylinder)와 마주보고 회전하는 스파이크 드럼(spiked drum)으로 구성되어 연질(軟質)의 곡물을 제거시키는 **곡물부스러기 제거기**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온도 변화에 의하여 조작되는 기계 설비(제8419호). 예를 들면, 건조 컬럼과 냉각 컬럼 같은 것은 제8419호에 분류하나 가열장치를 갖춘 곡물가습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

(b) 원심식 건조기(제8421호)

(c) 컨베이어와 엘리베이터[예: 버킷(bucket)식·벨트식이나 공기흡인식의 것](제8428호)

(B) **분쇄기나 파쇄기** :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분쇄기**

(2) **“파쇄용(breaking)” 롤이나 분쇄기** : 수조의 흠이 파인 롤러(때로는 내부가 냉각된 경우도 있다)로 구성되며 이것은 곡물을 중분·세몰리나·고운 가루로 부순다.

(3) **평활롤러를 갖춘 제분기** : 곡물의 거친 가루·세몰리나(semolina) 등을 고운 가루로 변화시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4) **분쇄기나 충격그라인더** : 제분공정 위에서 분쇄기나 제분기의 롤러에 고착된 곡물을 고운 가루·거친 가루 등으로 분쇄하는데 사용한다.

(5) **공급기** : 분쇄 롤러에 규칙적으로 일정한 흐름의 곡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호에는 농장용의 소형 분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제8436호).**

(C) 거친 가루나 중간 가루로부터 고운 가루를 분류·분리하는 기계

이 그룹에는 제분공정에서 생긴 고운 가루·거친 가루·중간 가루 등을 분리하기 위한 기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분리작업의 효과는 다음 형식의 기계그룹에 의한 일련의 연속 조작에 의하여 발생한다.

- (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로부터 고운 가루를 분리하는 **기계식의 체(“bolter”)** : **원심식의 체 [또는 릴(“reel”)]**는 내부에는 비터 바(beat bar)가 붙어있고 외부는 여러 가지 규격의 메시(mesh)로 된 거즈로 덮힌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동식 체나 플랜시프터(plansifter)**는 자유로운 방향으로 흔들어지는 한조의 적중체와 가루받이로 구성되어 있다.
- (2) **기계체나 “청정기(purifier)”** : 중간 거친 가루 등을 선별하는 것으로서 진동체에 의하여 분리된 겨는 체 속을 관류하는 공기에 의하여 날려진다.
- (3) **겨 세정기**
- (4) 고운 가루·겨 등을 **혼합하는 기계** ; **고운 가루에 비타민을 첨가하는 기계**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가루 건조기(제8419호)
- (b) 선별기나 기계식 체로부터 나오는 배기 중 먼지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에어필터와 “사이클론”(제8421호)
- (c) 제분 추출물 기록용의 추출기록기와 제90류에 분류하는 그 밖의 제분용 검사기

(III)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

여기서 말하는 가공(working)이란 보통 세정·선별·분류하기 전 미리 행해지는 것이다(위의 (1) 참조).

이들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박피기**
- (2) **탈곡기나 정미기**
- (3) **건조한 완두·렌즈콩이나 콩을 쪄는 기계**
- (4) **틀러 처리하였거나 납작하게 누른 귀리 등의 조제기**(보조가열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곡물[빵용 곡물 이외의 것, 앞에서 설명한 (1)항(B) 참조]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특수 분쇄나 파쇄용 기계**
- (6) 보리나 귀리에서 “까끄라기(beard)”이나 “포인트(point)”를 제거하도록 만든 “**까끄라기 제거(bearding)**”기계와 “**클리핑(clipping)**”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 (a) 열 교환에 의하여 작용되는 기계장치[예: 튀김과자나 배소(焙燒) 곡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증자기나 배소기 ; 대맥의 맥아화용이나 밀가루의 배소용의 설비 등](제8419호)
- (b) 제분 공정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기계(예: 제빵용·보존용이나 마카로니 제조용)(제8438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빵용 곡물의 제분업용의 체(sieve)와 체틀(sieves frame)[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5911호)] ; 혼합이나 분리용의 실린더(cylinder)·빵용 곡물의 제분기용이나 컨버터용 등의 롤러

다만, 밀스톤(millstone)은 제외한다(제6804호).

84.38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 8438.10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 8438.20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 8438.30 - 설탕 제조용 기계
- 8438.40 - 양조용 기계
- 8438.50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 8438.60 -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 8438.80 - 그 밖의 기계
- 8438.90 - 부분품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즉시 소비용인지 저장용인지에 상관없으며, 사람인지 동물용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이나 비휘발성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기계·조제용의 기계는 **제외한다(제8479호)**. 이 호에는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공업용 기계나 상업용 기계도 포함한다.

다만, 실제로 식품공업용기계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제8210호나 제8509호**에 분류하는 가정용 기기(예: 육류 박절기와 빵 절단기)
- (b)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오븐(**제8417호나 제8514호**)
- (c) 조리·배소(焙燒)·가열증기 등의 기계류와 장치(**제8419호**)
- (d) 원심 분리기와 여과기(**제8421호**)
- (e) 병주입·통조림·포장용 기계(**제8422호**)
- (f) 제분공업용 기계(**제8437호**)

(I) 베이커리 기계

빵·비스킷·페이스트리(pastry)·케이크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가루반죽(dough)이나 페이스트리류의 믹서** : 고정식이나 가동식의 아암(arm) 또는 블레이드(blade)를 갖춘 회전식이나 고정식의 용기로 구성되며 가루반죽을 반죽하는데 사용한다. 고속믹서에서는 수냉용(water-cooled)의 재킷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 (2) **가루반죽(dough) 분할기** : 홉퍼(hopper)로부터 공급된 가루반죽을 기계적으로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는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계에는 가루반죽용의 계량장치나 롤기가 결합된 것도 있다.
- (3) **성형기(成形機)** : 분할된 가루반죽(dough)을 굽는데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하는 기계이다.
- (4) 빵이나 케이크 등의 **박절기(slicing machine)**
- (5) **빵가루 제조용으로 설계된 기계**
- (6) 비스킷·케이크류의 **분할·성형·절단이나 충전기**
- (7) **케이크 디포지팅기(cake depositing machine)** : 케이크 형 속에 케이크 재료를 적량으로 넣어주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빵용 오븐(제8417호나 제8514호)
- (b) 제8420호에 분류하는 파이류를 판 모양으로 만드는 로울기

(II)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마카로니 페이스트 조제용의 **혼합기(mixing machine)**
- (2) 판 모양으로 롤링한 파이(pastry)를 일정한 모양으로 **자르거나 형압하는 기계** : 이 기계는 파이를 롤링하는 장치와 결합된 것도 있다.
- (3) 마카로니·스파게티 등의 **연속 추출기** : 적당한 모양의 다이(die)를 갖춘 추출기로서 문자·모양·그 밖의 특별한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 가루반죽은 다이스 판이 외측에 달린 회전나이프에 의하여 일정한 두께로 절단한다.
- (4) **라비올리(ravioli) 등을 채우는 기계**
- (5) 마카로니·버미셀리(vermicelli) 등을 타래 상태로 **꼬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마카로니 예비건조기와 건조기(제8419호)
- (b) 마카로니 가루반죽(dough)·파이 등을 판 모양으로 만드는 로울기(제8420호)

(III) 설탕과자(confectionery)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가루설탕조제용의 **분쇄기와 파쇄기**
- (2) **과자혼합기** : 보통 교반기나 분쇄기를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가열이나 냉각용 코일이나 재킷이 부착된 것도 있다.
- (3) **“풀링(pulling)”기** : 크랭크상의 회전 아암(arm)으로 가당된 부드러운 설탕혼합물 재료를 혼련하는데 사용한다.
- (4) **당의용 냄비(dragee pan)** : 보통 구리나 유리로 만든 반구(半球) 모양의 냄비로서 경사축 위를 회전하면서 단단한 중심물(예: 아몬드)에 설탕·초콜릿 등을 코팅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의용 냄비는 외부의 열원(가열된 공기나 독립된 가스버너 등)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인지, 냄비 자체가 발열체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5) **설탕과자의 성형·절단이나 분뜨기용으로 설계된 기계**

이 호에는 설탕 보일러와 그 밖의 가열장치(제8419호)나 냉각장치(제8418호나 제841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IV) 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배소(焙燒)한 코코아두를 탈피·탈배(脫胚)하거나 부수어서 “닙(nib)”으로 만드는 기계**
- (2) 파쇄된 코코아 두와 그 결과로 생긴 페이스트를 “코코아매스(cocoa mass)”로 만들기 위하여 **혼합·반죽과 분쇄하는 기계**
- (3) 코코아매스로부터 **코코아 버터를 추출하는 프레스(press)** : 이 기계에는 코코아버터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스트를 가열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 (4) **코코아가루의 조제용 기계** : 코코아 버터를 추출한 후에 남은 코코아 케이크를 잘게 부수는 기계로서 일반적으로 가루를 체로 치거나 선별하며 때에 따라서는 방향성(芳香性 : aroma)이나 가용성(可溶性)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첨가물을 함께 혼합하기도 한다.
- (5) 코코아버터·코코아가루·설탕 등의 **혼합기** : 이 기계에는 혼합될 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 (6) 혼합물의 **틀처리기와 정제기**
- (7) **콘체(conche)** : 가열장치와 동력 구동식 롤러와 그라인더 등을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혼합물의 성분을 충분히 균일화하고 열처리하는데 사용한다.

- (8) **초콜릿을 성형하기 전에 균질화시키고** 일정량만큼씩 압송이나 압출시키는 기계
- (9) **조립기나 성형기(成形機)** : 이 기계는 보통 진동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주입부에 발열체와 성형물의 냉각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 (10) **피의기(enrobing machine)** : 주된 부분이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되며 그 위에 놓인 비스킷·단과자나 그 밖의 중심물이 초콜릿이나 설탕의 분사기나 용융(鎔融)조 속을 통과함으로써 입혀지게(coated) 된다. 이들 기계는 항상 가열소자를 내장하고 있다.

(V) 설탕 제조용 기계

당즙의 추출기는 당즙을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하느냐 사탕무로부터 추출하느냐에 따라 그 형이 다르다. 그러나 당즙으로부터 설탕을 추출하는 기계는 각각의 경우 거의 유사하다.

(A) **사탕수수로부터 당즙을 추출하는 기계.** 예를 들면 :

- (1) **절단기(cutter)나 디파이버레이터(defibrator)** : 양단에 날이 선 나이프의 열로 구성되며 이를 고속 회전시켜 사탕수수를 긴 섬유상으로 절단한다.
- (2) **분쇄기(shredder)** : 사탕수수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톱니 모양 롤러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조각조각 찢어진다.
- (3) **파쇄기(crusher)** : 조정 가능한 물결 모양의 금속 롤러가 반드시 구성되어 있다. 잘게 부수는 작업과 부수는 작업을 겸하는 기계도 있다.
- (4) **롤러 밀(roller mill)** : 일반적으로 부서진 사탕수수로부터 당즙을 추출하기 위한 홈이 파인 롤러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급송과 컨베이어장치·착즙하는 동안 사탕수수에 물을 뿌리는 장치와 침연조(maceration bath)를 갖추고 있다.

(B) **사탕무에서 당즙을 추출하는 기계.** 예를 들면 :

- (1) **세척기(washing machine)** : 대형의 채널, 탱크 등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교반기나 유사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2) **슬라이싱머신(slicing machine)** : 이들은 바닥에 절단 날이 붙어있는 회전원판이나 내면에 나이프(사탕무는 특수 설계된 유도판이나 원심력에 의하여 그 나이프에 사출된다)가 부착된 회전드럼인 원통형의 대형 용기일 수도 있다.

(3) **확산장치(diffusing apparatus)** : 슬라이스된 사탕무로부터 삼투압에 의하여 당즙을 추출하는 장치이다. 각 확산기는 스팀코일에 의하여 물을 가열하는 장치를 가진 가온기로 구성되고 열수에 의하여 사탕무의 칩으로부터 당즙을 추출하는 대형의 침출조로 구성된다. 단독으로 제시하는 확산조도 이 호에 분류하나 가온기가 단독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4) **펄프프레스(pulp press : 마쇄프레스)**

(C) **당즙으로부터 설탕을 추출하는 기계와 당즙기계**

(1) **아황산염포충조(sulphiting vessel)** : 교반기를 갖춘 것은 이 호에 분류하나 가열장치를 갖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8419호)**.

(2) **결정용 기계** : 서서히 교반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농축장치로부터 시럽상의 덩어리 (“masse cuite”)가 이 장치 내에서 공냉되어 앞 공정에서 시작된 결정화가 완전히 끝난다.

(3) **설탕을 덩어리 모양으로 쪼개거나 부수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청정용 용기·당즙농축장치·진공 끓임 팬이나 결정용 팬과 **제8419호**에 해당되는 그 밖의 장치

(b) 원심분리기와 여과프레스(fitter press)(**제8421호**)

(VI) **양조용 기계(brewery machinery)**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서서히 교반하는 장치·회전드럼이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계**

(2) 건조된 맥아의 탈근용 **회전 실린더(cylinder)와 기계식 체**

(3) **맥아 파쇄기**

(4) **양성조(mashing vat)** : 교반기 등은 갖추고 있으나 가열장치는 없다. 이 조(vat) 속에서 부서진 맥아는 물과 혼합되어 전분질이 당으로 전환된다(당화).

(5) **여과조(straining vat)** : 교반장치와 구멍 뚫린 이중저부를 가지고 있는 대형 용기로서 맥즙으로부터 엿기름 찌꺼기를 분리한다.

이 호에는 또한 제16부의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서 특히 발아용 기계·맥아과쇄기·양성조·여과조로 구성되는 맥주 양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다만, 이들의 보조기계(예: 병주입 기계·레이블인쇄기계)는 **포함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제16부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기계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는 발효조 ;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맥아 건조기 ; 가열장치를 갖춘 침연조(macerating vessel)와 양성조(mashing vat) ; 홉의 자출조·홉과 맥아즙의 끓임용의 용기(제8419호) ; 냉각 코일을 갖춘 발효조와 맥주냉각기(제8418호나 제8419호)
- (c) 여과 프레스(fitter press)(제8421호)

(VII)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동물의 도살과 그 뒤 처리용 기계**
- (2) **돼지의 탈모기** : 도살체를 넣어서 회전시키는 광주리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몇 개의 벨트 스크레이퍼(scraper)로 구성되어 있다.
- (3) **식육용 절단기와 세절기** : 원형톱이나 회전나이프 등의 적용으로 도체(屠體) 등을 자르는데 사용된다.
- (4) **골절기와 골쇄기**
- (5) **육타기(meat beating machine)** : 칩이나 날이 붙은 빗으로 살고기의 신경선을 잘라서 연화시키는데 사용한다.
- (6) **식육용 민싱기와 다이싱기**
- (7) **장(gut)의 세척기**
- (8) **소시지 충전기** : 원통상의 용기로 구성되며 피스톤(piston)으로 고기를 소시지 케이싱 속에 집어넣는 기계이다.
- (9) **식육과 베이컨의 박절기(slicing machine)**
- (10) **식육이나 지방의 몰딩프레스(moulding press)**

- (11) **가금(家禽)의 도살용·탈모용과 내장취출용 기계**[전기식의 타격용이나 출혈용 나이프·대량처리용의 가금(家禽) 탈모기·내장취출기와 모래주머니 제거기와 허파추출기]
- (12) **육의 염장용 기기**[수동식의 염수 인젝션 건(injection gun)이 펌프에 부착된 것이나 염수 주사침을 갖춘 격자에 육을 이송하는 전자동식 컨베이어 장치]

이 호에는 제8419호에 해당되는 보일러·고압솥·가열 찬장과 이와 유사한 설비나 기계는 제외한다.

(VIII)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박피기(peeling machine)**. 예:

- (1) **연마식 박피기(예: 감자용)** : 연마재를 내면에 바른 회전식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 (2) **박피기(예: 사과와 배용)** : 조절 가능한 칼로 나선 모양으로 껍질을 베끼는 기계로서 심이나 씨를 제거시키는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 (3) **감귤류의 박피기** : 보통 네 토막으로 잘라서 껍질을 제거하거나 미리 반분된 과실로부터 알맹이를 도려내도록 되어 있다.
- (4) **화학식박피기** : 이 기계는 보통 과실이나 채소를 열수, 알칼리 용액 등을 분사시키거나 이것으로 채워진 용조 속을 통과시키기 위한 컨베이어밴드이나 회전드럼으로 구성되며 과실이나 채소는 세척조 속으로 힘차게 굴러 떨어져 껍질이 제거된다. 이러한 박피기는 물이나 알칼리의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완두나 이와 유사한 채두류의 겉껍질을 제거하는 기계** : 보통 비터(beater)가 붙은 회전식 천공드럼으로 구성된다.

(C) **그린빈(green bean)의 끝을 자르는 기계**

(D) **건포도·구스베리(gooseberry)·앵두·포도 등의 줄기 등을 제거하는 기계**

(E) **과실의 핵이나 씨 등을 제거하는 기계**

(F) **견과류 등의 탈곡용 기계**

(G)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채소·매니옥 등을 부수거나 절단하는 기계**

(H) **양배추를 사우어크리우트(sauerkraut)용으로 절단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기계**

(I) **잼·소스·토마토 퓨레(tomato purée) 등을 조제하기 위하여 과실이나 채소의 과육을 마쇄하는 기계**. 다만, 과실주스[예: 복숭아·그레이프 프루트(grapefruit)와 토마토 등] 제조용의 압착기는 제외한다(제843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화염식이나 복사열(radiant heat)식 박피기(제8417호)
- (b) 제8419호에 해당되는 과실의 표백기, 감자 플레이크 조제용의 가열기와 그 밖의 장치
- (c) 과실이나 채소의 선별기(제8433호)

(IX) 어류·어패류 등의 조제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머리·꼬리·뼈 등을 스케일링(scaling)·스키닝(skinning)·거탕(gutting)이나 제거(removing)하는 기계
- (2) 어류의 배를 가르거나 얇게 저미거나 잘라서 필레(fillets)로 만드는 기계
- (3) 어패류(shell fish)의 각을 떼어 내거나 살을 자르는 기계
- (4) 말린 어류로 어류 가루를 만드는 분쇄기

기름으로 튀기거나 훈제하거나 염장하는데 사용하는 장치나 그 밖의 기기로서 제8419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X)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산업용의 그 밖의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아세트화 작용을 위한 기계적 기구(식초 제조에 사용한다)
- (2) 커피 두(豆)의 탈피기[실린더(cylinder)형·디스크(disc)형이나 블레이드(blade)형]
- (3) 추출기 : 스파이크롤러형의 것으로 오렌지에서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 (4) 차잎(tea-leaf)의 절단용이나 롤링용 기계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예를 들면, 연속식 빵 제조기용의 형(pan)·청동이나 황동제의 초콜릿 성형기(成形機)용과 추출다이용의 형·마카로니·스파게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추출공정에서 사용하는 형].

84.39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이공용 기계

- 8439.1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 8439.20 -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 8439.30 - 종이·판지의 완성이공용 기계
 - 부분품
- 8439.91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 8439.99 -- 기타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섬유소 원료[목재·짚·버개스(bagasse)·종이의 웨이스트 등]로부터 섬유소 펄프를 제조하는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된 펄프는 종이·판지나 그 밖의 목적(예: 비스코스레이온·특정의 건축용 보드나 폭발물 제조용)의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지에는 상관없다. 또한 이미 제조된 펄프(예: 기계적이나 화학적 목재펄프)로부터나 원료[목재·짚·버개스(bagasse)·종이의 웨이스트 등]로부터 직접 종이나 판지를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종이나 판지를 여러 가지 용도에 적합하도록 완성 가공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제8443호**의 인쇄기는 **제외한다**.

(I)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펄프제조 등의 공정에 있어서의 원료의 전(前)처리용 기계. 예:

- (1) 웨이스트 종이나 판지를 펄프화하는 기계
- (2) 짚과 이와 유사한 재료용의 오프너(openers)와 집진기(dusters)
- (3) 제지공업용 죽(竹)파쇄기와 특수한 짚 절단기
- (4) 목재 칩 절단기와 목재 칩 분급용 진동식 선별기
- (5) 목재 파쇄기(log grinding machine)
- (6) “메서나이트(masonite)” 섬유분리기 : 목편은 고압을 계속하여 받다가 감압됨으로써 섬유로 변화한다.

(B) **스트레이너(strainer)** : 이 기계 중에서 희박한 펄프액은 파쇄되지 않은 것과 종이·마디·오물 등을 남기고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한다. 그러나 원심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제8421호)**.

(C) **흡습기(wet lapper : presse-pâte machine)** : 기계적 파쇄기나 화학침지기를 거친 목재섬유의 펄프상의 덩어리로 응집하여 시트(sheet)를 형성한다.

- (D) **정제기(refiner)** : 보통 회전 바(bar)를 내장한 원추 모양의 케이스로 구성되며 회전 바는 큰 섬유나 덩어리를 부수고 이미 충분히 부순 것을 통과시키도록 되어있다.
- (E) **파쇄기(crusher)와 파목기(grinder)** : 특정 용도[예: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의 조제]에 제공하는 섬유소 펄프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조제한 종이 펄프를 처리하는 기계이다.

(II) 종이 · 판지의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제지원료를 종이나 판지의 연속 시트(sheet)로 형성하는 기계[예: 포드리니어(Fourdrinier) 기계나 트윈 와이어기]** : 매우 복잡한 기계로서 헤드 박스(head box)에 제지원료를 공급하는 조정기 · 보통 합성 단섬유의 직물로서 브레스트(breast)롤이나 포밍(forming)롤에 지지되어 있는 엔드리스 밴드 위에 제지원료를 분배하기 위한 헤드 박스 출구에 있는 슬라이스(slice) · 포일(foil) · 테이블 롤 · 진동기구 · 흡수상자 · 종이에 투명 무늬를 넣는 투명한 무늬 롤 · 건조된 고체물을 증가시키고 종이를 결합하는 카우치 롤(couch roll) · 적어도 하나의 압축 님(nip)과 압축 롤을 형성하고 있으며 압축 슈(shoe)와 주변 폼을 포함하기도 하는 압축 롤 · 종이가 하나나 두 개의 엔드리스 펠트 벨트나 두 개의 다른 공정의 벨트 사이에서 압축되는 회전 벨트 루프 · 건조롤 · 증기 박스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 캘린더 롤과 감기용(reeling) 기계 등도 갖추고 있다.
- (B) **배트기(vat machine)** : 이러한 기계는 (A)에 기재된 기계와 유사한 원리이나 펄프를 촘촘하게 짠 망의 엔드리스 밴드로 유출시키는 대신에 용기로부터 촘촘하게 짠 망이 회전하는 실린더(cylinder) 위로 퍼내는 펠트로 만든 밴드로 보내고 잇달아서 압축 롤(때로는 흡수형의 것도 있다)로 보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일련의 건조 실린더에 도달한다. 종이와 판지는 긴 웹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어느 한 가지 모양으로 제조한다. 이러한 기계에는 실린더 둘레에 여러 층으로 둥글게 감은 펄프의 층에 의하여 판지가 성형되는 것도 있으며 이렇게 하여 충분한 두께가 성형되면 실린더(의 길이 방향으로 손이나 기계에 의하여 시트(sheet) 모양으로 절단한다.
- (C) **다층지 · 보드지나 판지 제조용 기계** : 이 기계는 포드리니어(Fourdrinier) 형성자나 트윈 와이어 형성자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각 웹 층은 동시에 만들어지며 대개 결속기 없이 습기가 있는 상태로 그 기계에서 결합되어진다.
- (D) **시험용지샘플 제조용의 견본 드로잉 기기** : 이들 기계는 제조관리용의 견본제조기계라고도 불리운다.

(III) 종이 · 판지의 완성이공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감기용(reeling) 기계** : 이들의 어떤 기계는 종이를 신장함과 동시에 평활하게 하고 정전기를 방전시키기도 한다.

- (B) **여러 가지의 표면피복용 기계[캘린더(calender)를 제외한다]** : 무기나 유기 안료층·아교물·검·실리콘·밀납 등의 피복 ; 카본지나 감광지 등의 피복 ; 벽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코르크나 운모가루 등을 종이에 피복을 하는 기계
- (C) **종이나 판지에 기름이나 플라스틱을 침투시키는 기계**와 역청가공이나 타르를 침투시킨 루핑지(roofing paper)의 제조기
- (D) **선 긋는 기계(ruling machine)** : 잉크조로부터 잉크를 공급받고 있는 작은 원판이나 강(鋼)으로 만든 펜으로 작업하는 기계이다. 다만, 제8443호의 인쇄기는 제외한다.
- (E) **크레이핑기(crêping machine)** : 보통 가열된 실린더(cylinder)에서 나온 종이를 문질러 종이의 주름을 발생하게 하는 금속으로 만든 스크레이퍼(scraper)나 보정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크레이핑은 보통 종이 제조기 내에서 수행한다.
- (F) **종이에 가습하는 장치**["용지조습기(paper conditioner)"라고도 한다] : 종이나 판지의 전면에 가습공기를 쏘이는 것이다.
- (G) **그레이닝(graining)용과 엠보싱(embossing)용의 기계**[동일목적에 사용하는 캘린더(calender)는 제8420호에 분류한다].
- (H) **주름잡는 기계(corrugating machine)** : 적층 장치와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
* *

어떤 종이완성 가공기계[예: 피복·적층이나 감기용(reeling)]에는 금속 박(箔)·플라스틱 시트(sheet)·직물 등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가 주로 종이나 판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열거된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어떤 기계와 결합된 것도 있다[예: 폐수로부터 섬유나 사용가능한 물질을 회수하는데 사용하는 여과기(제8421호)·여러 가지의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예: 평활·광택·부각용의 것)(제8420호)·종이 절단기(제8441호)]. 이러한 구성기계가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복합기계와 함께 분류하나 분리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닝마·짚 등에 사용하는 보일러 ; 화학목재펄프 조제용의 보일러(digester) ; 증기 가열식 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건조기(제8419호)
- (b) 워터제트식 박피기(제8424호)와 목재를 박피하는 기계(제8465호나 제8479호)
- (c) 인쇄기(제8443호)
- (d) 닝마 소모기·풀링(pulling)기와 반모기(제8445호)
- (e) 별커나이즈드 파이버 제조용 기계(제8477호)
- (f) 종이·직물·목재 등에 연마 재료를 피복하는 기계(제8479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하며, 그 예를 들면 :

백폴(backfall) ; 비터(beater)용 받침대와 비터 바(beater bar) ; 카우치 롤(couch roll) ; 흡수상자(suction box) ; 배트기(vat machine)용 실린더(cylinder) ; 투명무늬 내는 롤(dandy roll)

다만, 다음의 것은 이 호의 부분품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 (a) 포드리니어(Fourdrinier)기와 트윈 와이어기용(twin wire)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와 펠트로 만든 롤러커버(제5911호)
- (b) 에지러너용 석(edge-runner stone) · 연마석 · 현무암 · 용암이나 천연석으로 만든 베드플레이스와 백폴(backfall)과 그 밖의 부분품(제6804호와 제6815호)
- (c) 청동선과 구리선(예: Fourdrinier wire)으로 직조된 엔드리스 벨트(제7419호)
- (d) 기계용 나이프와 절단용 날(제8208호)
- (e) 캘린더 롤(제8420호)

84.40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 기계

8440.90 - 부분품

이 호에는 책(소책자·팜플릿·정기간행물·장부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만드는 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제본용의 접는 기계(leaf-folding machine)** : 이러한 기계는 전지 크기의 종이를 적합한 페이지의 크기로 되도록 여러 번 접는 기계이다. 이러한 기계는 또한 그 밖의 접는 작업에 사용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2) **스태이플링기(stapling machine)와 철선으로 꿰매는 기계(wire-stitching machine)** : 여기에는 판지상자나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 (3) **집적기(gathering machine)와 꿰매는 기계(stitching machine)** : 시트(sheet)를 손으로 컨베이어체인 위에 놓으면 부분적으로 모아져 나가며 그다음에 스티칭 헤드(stitching head)로 보내어진다.
- (4) **롤링기(rolling machine)나 해머링기(hammering machine)** : 재봉하기 전의 미(未)철된 책을 압축한다.
- (5) **재봉되지 않은 책의 권(捲)축을 “그레퀴(grecquer)”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 즉, 철하는 실을 통하게 하기 위하여 권축의 뒷면에 얇게 홈을 내는데 사용한다.
- (6) **제본재봉기(book-sewing machine)** : 재봉(철)만 하는 간단한 것과 기계로 접혀진 인쇄물을 배치하는 공급기·인쇄물을 꿰매는 재봉장치와 보통 책의 배면에 직물로 된 보강재를 붙이는 재봉기로 형성되는 복잡한 제본 재봉기도 포함한다.
- (7) **책표지를 붙이기 전에 배면을 평탄하게 하거나 둥글게 하는 기계**
- (8) **제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루스한 페이지(loose page)나 지도장으로 정리하기 위한 지도에 세폭의 종이나 직물을 붙이는 기계**
- (9) **값싼 책·팜플릿 등에 종이로 만든 표지를 아교로 붙이는 기계**
- (10) **책표지 제조기계** : 이러한 것에는 보통 종이·판지·직물 제책표지 등을 필요한 매수만큼 나르는 공급 장치, 접착 장치와 프레스(press)와 때로는 가열용이나 건조용 장치를 포함한다.
- (11) **완성 가공된 책표지를 평탄하게 하는 기계** : 이러한 것은 롤러 시스템과 테이블로 구성된다.
- (12) **교착과 프레싱에 의하여 책표지에 임시로 가철한 책을 교착시키는 기계** : 어떤 기계는 낱장의 그림·도안·지도와 이와 유사한 것을 삽입하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 (13) **책 가장자리를 도금이나 착색하는 기계**

- (14) 책표지와 때로는 다른 물품(예: 가죽제품)에 **금칠한 문자나 금칠한 모양을 인쇄하는 기계** : 그러나 범용(汎用)성의 프레스(press)(제8479호)와 일괄하여 조립된 활자를 **교환 사용하는 인쇄기(제8443호)**는 제외한다.
- (15) **페이지 번호 인자기**(예: 기록부와 원장용)
- (16) **각 페이지에 뚫린 구멍을 통해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선[또는 환선(環線)]으로 반영구적으로 페이지를 조합하는 기계** : 이러한 것은 보통 천공장치와 나선을 통과시키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보통 나무로 만든 것으로서 교차하는 실을 지지하는 스크루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손으로 책을 봉철하는데 사용하는 테이블(제4421호)
- (b) 절단기용 칼(제8208호)
- (c) 종이나 판지를 접는 기계(책페이지를 접는 것을 제외한다) ; 종이나 판지의 절단이나 홈파는 기계 ; 꿰매어진 책·정기 간행물·팜플릿 등을 정돈하는 기계 ; 책의 각부와 가장자리를 다듬는 기계나 반달 색인·삼입물을 만드는 기계 ; 판지를 쌓아올리는 기계 ; 판지상자 제조용에만 적합한 스테이플링기(제8441호)
- (d) 인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백을 정리하고, 접고,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제8443호)
- (e) 직물 절단기(제8451호)
- (f) 재봉기용의 바늘(제8452호)
- (g) 재봉용 가죽가공기계(제8453호)
- (h) 사무실에서 서류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스테이플링기(제8472호)

84.41 -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 절단기

8441.20 -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8441.30 -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
[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441.40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441.80 - 그 밖의 기계

8441.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절단용(모든 절단기 체분기계는 **별도로 하고**)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한 **후**에 필요한 폭이나 거래에 적합한 크기의 시트(sheet)로 절단하는 기계로부터 각종의 종이제품제조용의 기계까지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시트(sheet)로 절단하기 위한 종이의 트리밍(trimming)기와 절단기(다수의 날을 갖춘 절단기를 포함한다)** : 이러한 기계에는 종이제조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릴(reel)이나 정방형 절단기·책·팜플릿용의 트리밍기(trimming machine)·책의 각 부분을 등글게 하는 기계나 반달형 색인삽입물을 제조하는 기계·종이 전단기(paper shear)·“재단기(guillotine)”·사진이나 사진용의 대지 절단용 기기를 포함하나, 다만, 사진실이나 영사실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필름 절단용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9010호)**.
- (2) **다이커팅(die-cutting)기**(색종이 조각·레이블·레이스페이퍼·인덱스카드·창이 달린 봉투·상자모양 등)
- (3) 판지상자·종이상자·서류표지 등에 사용하는 판지를 **절단하거나 윤곽성형하거나 홈을 파는 기계**
- (4) **종이백 제조용 기계**
- (5) **봉투 제조용 기계**(절단·접는 것·속봉투를 넣는 것 등)
- (6) **판지상자와 종이상자를 접어 만드는 기계**
- (7) **상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스테이플링기** : 체분이나 제상(製箱)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단순한 와이어 스테이플링기는 **제외한다(제8440호)**.
- (8) **카톤(carton)과 박스 제조용의 그 밖의 기계**
- (9) **감기용(winding) 기계** : 종이관(紙管 : paper tube)·실패·슬리브·절연용관·카트리지 케이스(cartridge case) 등의 제조용의 것
- (10) **왁스처리한 종이(waxed paper)로 만든 컵·용기 등의 성형기(成形機)** : 보통 시임(seam)의 성형장치와 교착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 (11)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 [알(egg) 포장 ; 제과용이나 캠핑용 종이 접시·완구 등] ; 보통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있으나 이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 (12) **와인더[슬리터 와인더(slitter-winder)]** : 감겨진 종이를 풀어서 필요한 폭의 밴드로 절단하고 그것을 다시 감는데 사용한다.
- (13) **쌓아 올리는(집적)기계** : 시트(sheet)·카드 등을 순서대로 가지런히 쌓아 올리는 기계
- (14) **천공기** : 이러한 것에는 우표·화장지 등에 먼저 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침공·장방형(또는 가늘고 긴 구멍) 등].
- (15) **접는 기계(제8440호의 페이지 접는 기계를 제외한다)**
- (16) **궐련지(cigarette paper)를 절단하고, 접고, 삽입하고 포장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다만,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는 간단한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프레스(press)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79호)**.

*
* *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기계, 특히 종이백 제조기나 상자를 접는 기계는 인쇄 장치를 갖춘 것도 있으나 이러한 기계는 제16부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가 그 기계의 주된 기능이 아닌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앞서 언급한 어떤 기계[절단기·접는 기계·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판지제품 건조용의 스토브(stove)(**제8419호**)
- (b) 판지로 만든 용기를 제작하거나 해당 용기(carton 등)에 인쇄하는 포장기계(예: 초콜릿용)(**제8422호**)
- (c) 종이(紙) 스트립을 꼬아진 실(絲)로 만드는 기계(**제8445호**)
- (d) 종이백 제조용 재봉기(**제8452호**)
- (e) 종이카드나 문서에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는 펀칭기계와 비밀문서를 파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 파쇄기(**제8472호**)
- (f) 아이레팅기와, 침전에 의하여 종이접과 용기 등에 왁스칠하는 기계(**제8479호**)

84.42 -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 기계류·장치·장비

8442.40 -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8442.50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이 호 후단의 **제외규정**은 예외).

- (1) 인쇄기의 인쇄 부분품 : 예를 들면, 문자나 삽화(수작업에 의하였거나 제8443호의 기계로 만들어진)를 인쇄하는 데 사용하는 인쇄용 조판이나 글자·도안 등을 새겨 넣은(engraved) 판과 실린더(cylinder) ; 조제된 석판석·실린더와 판(즉, 인쇄 작업 이후에 이미지를 받거나 새겨 넣는데 적합하도록 조제된 것)
- (2) 위에서 언급한 인쇄용 부분품 만들기 위한 것이거나, 조립(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와 부속품(수동식인지 기계식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종이·직물·리놀륨·가죽이나 그 밖의 재료 중의 어느 하나에 **인쇄공정**에 의하여 문자·삽화나 반복적인 도안을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장치를 분류한다.

- (I) **볼록판(凸版)인쇄** : 이러한 공정은, 활판에 사진으로 새겨진 판을 사용하여, 문자나 이미지의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칠하여진다.
- (II) **평판인쇄** : 석판·사진석판이나 오프셋(offset)인쇄에 의한다. 인쇄잉크는 인쇄판 등의 평탄한 면의 특별하게 조제된 부분에만 묻게 된다. 이러한 범주의 인쇄에는 스텐실(stencil) 인쇄도 또한 포함한다.
- (III) **오목판(凹版)인쇄** : 운전그라비아판, 식각되었거나 문자·삽화 등이 새겨진 금속으로 만든 판에 의한 것. 인쇄용 잉크는 새겨진 부분이나 식각된 부분에 묻게 된다.

(A)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문서로부터 직접 복제하는 방식으로 제판을 만드는 기계** : 이러한 기계에 있어, 광전지가 문서를 주사하면 광전지의 전자장치에서 전송된 임펄스(impulse)가 어떤 인쇄 공구를 활성화시켜 플라스틱판에 인쇄내용을 새긴다.
- (2) **판이나 실린더(cylinder)를 산(酸)으로 식각하는 기계** : 교반장치가 부착된 특수한 용기(槽)로 구성된다.
- (3) **오프셋(offset) 아연판을 감광하는 기계(horizontal whirler)** : 일반적으로 전기가열 장치를 갖추고 있다.

*
* *

이 호에는 비록 활자가 조판된 후에 촬영되는 것일지라도 실제로 활자를 조판하는 사진식자기나 식자기만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 호는 인쇄용 플레이트나 실린더(cylinder) 제조용의 사진기·사진확대기나 축소기·사진밀착 프린터(photographic contact printer)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진용기기를 제외한다(제90류).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행잉 프레임(hanging frame)[베드(bed)]나 슬라이딩 베드(sliding bed) 위에 설치된 종이나 황형의 제판용 사진기와 삼원색 인쇄용 사진기
- (b) 사진 확대기와 축소기·재생기기·인쇄 프레임
- (c) 계획설계용이나 밀착프린터용 광원(光源) 테이블

어떤 기기는 망판이나 이와 유사한 유리나 플라스틱 스크린으로서 정확하게 십자선이 그려진 것·컬러인쇄나 컬러스크린이나 컬러필터홀더용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컬러필터를 사용한다.

(B) 플레이트·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 [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cylinder)와 석판석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볼록판(凸版)이나 오목판(凹版)으로서 손·기계식이나 산(酸) 부식으로 새겨진 것** : 이러한 것은 나무로 만든 것·리놀륨으로 만든 것·구리로 만든 것·강(鋼)으로 만든 것 등이 있다.
- (2) **석판석** : 삽화는 손으로 그리거나 사진법으로 전사하여 산(酸)으로 조제되어진다.
- (3) **오프셋(offset) 인쇄판** : 아연이나 알루미늄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연한 금속판 위에 도안을 평판에 복제한다. 즉, 이것은 활판(凸版)도 요판(凹版)도 아니다.
- (4) **새기거나 식각되어진 실린더**
- (5) **부조(浮彫 : relief) 스탬핑(stamping)과 부조 인쇄용의 판과 주형** : 잉크에 상관없이 편지전문·초대장 등에 양각 무늬를 하는 기계
조각용이나 각인용에 적합하도록 조제된 **석판석·금속판과 실린더**는 설사 조각이나 각인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 (6) **평탄하거나 도톨도톨하게 가공된 석판석**
- (7) **금속 판(plate)이나 시트(sheet)** : 조각용으로 조제된 것(평탄·도톨도톨하거나 연마방식으로 가공된 것)
- (8) **표면이 완전히 연마되었거나 도톨도톨하게 된 금속으로 만든 실린더** : 이러한 실린더는 보통 주철(cast iron)로 만들며 일반적으로 구리로 전기도금 되었거나 제거될 수 있는 슬리브(sleeve)판으로 구성된 구리로 만든 덮개를 갖추고 있다.

(9) 사무용 오프셋(offset) 인쇄기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판 : 판의 가장자리는 항상 기계의 드럼에 부착하도록 처리되어 있다.

감광판[예: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레이트에 감광성의 사진유제를 도포한 것이나 감광제 플라스틱으로 된 감광시트(sheet)로 구성된 것으로 다른 재료나 금속을 지지하기 위해 부착되었는지는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370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스텐실(stencil) 인쇄기에 사용하는 아연·플라스틱·판지로 만든 형판(型板)(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복사지와 전사지(복제용 문자나 도안이 있는 것)(제4816호)
- (c) 실크스크린 인쇄기용 실크 스크린·도포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제5911호) ; 스크린 인쇄용 틀이 부착된 철망으로 조제된 것인지는 상관없다(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d) 금박을 입혀 낙인하는 기기(marking iron)(제8440호)
- (e) 금속·석·석재이나 목재가공 공작기계와 워터제트절단기[예: 모형을 평평하게 하고 완성 가공하는 기계 ; 패션을 평활하게 하고 절단하는 기계 ; 디스크나 볼(ball)을 도톨도톨하게(graining)하는 기계 ; 조각기 ; 밀링 커터(milling cutter) ; 루팅기(routing machine) ; 트림 톱(trim saw)](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
- (f)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되는 타자기·계산기나 그 밖의 기계의 활자와 그 밖의 인자(印字)부분품(제8473호)
- (g) 주형(제8480호)
- (h) 일반적으로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감광성 필름 위에 잠상을 생성하는 레이저포토폴로터(제9006호)
- (ij)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구(제9017호나 제9031호)

84.43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8443.12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43.13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443.14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443.15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443.16 -- 곡면인쇄용 기계

8443.17 -- 그라비아(gravure) 인쇄용 기계

8443.19 -- 기타

-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8443.32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8443.39 -- 기타

-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99 -- 기타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실린더(cylinder)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2)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벽지·포장지·고무·플라스틱판·리놀륨·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I) 제8442호의 플레이트(plate)·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이러한 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윤전기(rotary press)이다. 이 기계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두 개의 반원통형의 플레이트(letter press)를 갖춘 실린더(cylinder)나 조각된 실린더(그라비아 인쇄)나 양각된 실린더[(오프셋(offset)인쇄] 중 어느 하나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 착색 인쇄용의 윤전기는 잉크 롤러가 나란히 배치된 수 개의 인쇄용 실린더를 갖추고 있다. 모든 인쇄·압착과 잉크 공급기구는 회전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쇄기는 연속인쇄나 매엽(sheet by sheet)인쇄·흑색이나 유색인쇄와 종이의 단면이나 양면에 인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윤전기는 두 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릴공급식 인쇄기(reel-fed press)** : 어떤 대형의 윤전기는 수 개의 인쇄 유닛이 하나의 프레임에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모든 페이지를 일련의 조작으로 인쇄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로 인쇄기에 접속되어 작업하는 여러 가지의 보조 기계에 의하여 모든 페이지는 보내지고, 절단되고, 접어지고, 집합되고, 철하여지며 또한 쌓아 올려진다.
- (2) **시트 공급식 인쇄기(sheet-fed press)** : 인쇄용 낱장들은 그리퍼(gripper)에 의해 인쇄 유닛들을 통과하여 이송한다. 시트 공급식 인쇄기는 하나의 급지기(給紙機)·하나나 그 이상의 인쇄유닛·하나의 이송기계를 갖추고 있다. 급지기는 파일(pile)로부터 급지된 시트(sheet)를 정렬하여 인쇄유닛으로 보낸다. 이송기계에 의해 인쇄된 매엽지는 대량으로 쌓인다.

또한 이 그룹에는 이동 가능한 플레이트(또는 압반)를 사용하는 인쇄기와 원압식 인쇄기를 포함한다.

*
* *

위의 인쇄기(특히 소형과 중형의 윤전기)는 인쇄유닛과 나란히 배치된 일련의 보조 장치(making-up unit)를 갖춘 것도 있으며, 그러므로 단순한 종이의 릴(reel)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제품(예: 상자형·포장지·레이블·기차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간단한 연속적인 일련의 기계 공정으로 완성될 수 있다.

보통의 인쇄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기계도 포함한다.

- (i) 주석박(tin foil)으로 만든 상자나 그 밖의 용기의 인쇄기
- (ii) 시계문자판이나 그 밖의 특수한 모양의 물품에 인쇄하는 인쇄기
- (iii) 코르크·관(tube)·양초 등에 인쇄하는 기계
- (iv) 의류용의 마크 인쇄기
- (v) 책 페이지용 인쇄기
- (vi) 번호·날짜 등을 인쇄하는 기계(제9611호의 수동식의 날짜 도장과 이와 유사한 스탬프를 제외한다)(문자나 숫자 등을 갖는 철판이나 밴드로 조작되는 것으로서 잉크를 사용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 (vii) 사무용 소형 인쇄기 : 인쇄활자나 오프셋(offset) 공정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작동원리와 외관이 등사기와 유사하더라도 등사기로 분류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이다.

이러한 그룹에는 또한 특별한 미술판·놀이카드·유아용 그림책 등을 스텐실(stencil)이나 스텐실판으로 최초에 흑백으로 인쇄한 후 브러시·롤러나 분사식으로 채색하는데 사용하는 **유색 인쇄기**도 포함한다.

방직용 섬유·벽지·포장지·리놀륨·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블록인쇄기(block printing machine)** : 도안을 조각한 블록(block)(보통 양각한 상태)을 직물·벽지 등에 반복해서 압착시켜 기계를 통과하면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도안이 생산되며 ; 동일한 기계로 또한 별도의 도안을 인쇄하는데도 사용한다(예: 스카프나 손수건).
- (2) **롤러인쇄기(roller printing machine)** : 보통 크고 중추적인 실린더(cylinder)(드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그 주위에 일련의 양각된 착색롤러가 설치되었으며 여기에는 착색 통·공급롤러·닥터블레이드(doctor blade) 등을 갖추고 있다.
- (3) **스크린인쇄기(screen printing machine)** : 인쇄된 재료가 스텐실(stencil) 스크린피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4) **경사인쇄기(wrap printing machine)** : 직조 전에 날실빔으로부터 감지 않고 평행 경사판 위에 도안을 인쇄하는 것이다.
- (5) **실인쇄기(yarn printing machine)** : 이것은 실 위에 착색하는 것이다[때로는 실을 꼬기 전 로빙(roving) 상태로].

(II) 그 밖의 인쇄기(printer)·복사기(copying machine)·팩시밀리(facsimile machine)(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인쇄기(printer)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1) **정전식(靜電式) 프린터(electrostatic printer)** : 이것은 정전기 충전기·토너와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광원[예: 레이저·발광다이오드(LED)]이 특정 지점에 투사되어 전하를 양전하를 띤 광전도 표면(일반적으로 드럼)의 특정 지점에서 전하를 밀어내면 양전하를 띤 영상의 사본이 남는다. 음전하를 띤 토너가 광전도 표면으로 끌려가면서 원래 영상을 재생한다. 이때 토너는 광전도 표면보다 강한 양전하를 띤 인쇄 매체로 전이(轉移)되며 압력과 열을 가하여 인쇄 매체에 영상을 흘뿌린다.

(2)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

(B) 복사기(copying machine)

이 그룹에는 원본 문서로 사본을 만드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분류한다.

(1) **디지털 복사기(digital copier)** : 원본문서가 스캔되어, 감광표면[예: 전하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나 감광다이오드 어레이]이 광학이미지를 디지털형식으로 부호화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물품이다. 앞에서 설명한 이 호 해설서 (II)(A)에서 표현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프린터 엔진은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복사한다. 원본문서는 여러 장의 사본을 만들기 위해 한번만 스캔되며 이미지의 디지털 형식은 메모리에 저장된다. 아래 (D)에서는 이러한 기기 중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능을 갖춘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사진식 복사기(photocopier)** : 원본의 광학이미지가 복사할 때마다 감광성 표면에 조사(照射)된다. 대부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정전기식 사진식 복사기(electrostatic photocopying apparatus)에는 원래의 영상을 복사지에 직접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이나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이 있다. 직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 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물질[예: 산화아연이나 안트라센(anthracene)]을 도포한 기관(보통 종이) 위에 투영한다. 정전기 잠상에 가루 상태의 착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열처리에 의하여 기관에 정착시킨다. 간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 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셀레늄이나 그 밖의 반도체 물질을 도포한 드럼(또는 플레이트)에 투영되어진다. 그 정전기 잠상에 가루 상태의 착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그 상(image)을 정전계의 작용에 의하여 보통의 종이의 위에 전사하고, 열처리에 의하여 종이에 정착시킨다.

(b) 화학유제의 도포층을 이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감광면은 보통 은염이나 디아조화합물(후자는 자외선이 많은 광선으로 노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을 함유한 유제로 되어 있다. 현상과 인화의 처리는 유제의 성질과 기기의 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습식이나 건식 현상가열처리·암모니아 증기에 의한 현상·전사법 등)이 있다.

또한 이 그룹에는 밀착식 사진 복사기(contact type photocopying apparatus)와 열식복사기(thermo-copy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C) 팩시밀리 기기(facsimile machine)

팩시밀리(또는 팩스) 기기는 원문이나 그림을 네트워크로 송수신하고, 원문이나 그림의 재생 출력을 하는 기기이다. 아래 (D)에서는 이러한 기기 중 복사 기능을 갖춘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 인쇄기 · 복사기 · 팩시밀리의 조합품(combination)

인쇄 · 복사나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이나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multi-functional machine)로 알려진 것이다. 이들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의 범위는 아래 소호해설에 표시되어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물품에는 시트(sheet)나 롤상태의 종이의 공급 · 핸들링이나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이나 후에 행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분리제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로, 보통 인쇄기와 분리되어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스톡(stock)이나 파일(pile)용 엘리베이터와 종이를 넣는 칸이나 종이서랍장치** : 인쇄 대기용의 용지를 보관하는 곳이다.
- (2) **자동용지 공급 장치** : 낱장 인쇄용으로 사용한다. 기계 내부에서 완전히 중심이 맞추어진 상태에서 한 장씩 용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3) **종이 송달장치(sheet delivery machine)** : 공급기(feeder)와 유사하게 제작된 것이나 반대의 공정을 행한다(즉, 인쇄용지 공급과 인쇄된 용지를 쌓는다).
- (4) **분류기(sorter)** : 여러 장의 인쇄된 문서를 페이지를 맞추어 쌓는다.
- (5) **접고, 펼칠하고, 천공이나 철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 인쇄의 최종 공정에서 사용하며 인쇄된 페이지(신문 · 접는 인쇄물 · 정기간행물 등)를 접고 철하거나 꿰매는데 사용한다.
다만, 인쇄기와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제작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 **제8440호나 제8441호**에 해당한다).
- (6) **일련번호 찍는 기계** : 숫자 롤(roll of figure)로 작동하는 소형의 부속기계이다.
- (7) **인쇄산업용의 청동 광택을 칠하는 기계** : 이러한 기계는 금박 점착제 잉크로 인쇄되는 인쇄기로부터 나오는 종이 위에 금속가루를 뿌리는데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전식 복사기에 사용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 롤러와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드도 포함한다.

*
* *

이 호에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방직용 섬유의 직물·고무를 입힌 방직용 섬유의 직물·펠트·고무로 만든 실린더(cylinder) 블랭킷(blanket)과 덮개(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병·캔·박스·가방이나 그 밖의 용기의 레이블 인쇄용 기계와 포장기(**제8422호**)
- (c) 인쇄용 부착장치를 갖춘 기계. 예: 백에 물품을 충전하는 기계와 포장기(**제8422호**) ; 종이나 판지를 제조하는 특정기계(**제8441호**). 이러한 기계의 인쇄 장치가 분리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쇄 장치가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공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 (d) 얼룩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분사기(**제8424호**)
- (e) 젤라틴판식 인쇄기나 스텐실(stencil)식의 등사기와 주소인쇄기(**제8472호**)
- (f) 패턴 형성기(**제8486호**)
- (g) 마이크로필름(microfilm)·마이크로피체(microfiche)·그 밖의 마이크로포움(microform)의 문서 수록용 사진기(**제9006호**)
- (h) 일반적인 사진 인화용 프레임(**제9010호**)
- (ij) **제9017호**의 제도용 기기
- (k) **제9611호**의 수동식의 레이블 엠보싱기



[소호해설]

소호 제8443.11호·제8443.12호와 제8443.13호

이들 소호에는 평판(flat)에 도안을 재현하는 인쇄판이라는 수단에 의해 원판(impression)을 얻는 인쇄용 기계류를 분류한다. 즉, 오목판(intaglio) 인쇄나 볼록판(relief) 인쇄가 아니다[오프셋(offset) 공정에 해당하는 기계이다]. 인쇄된 이미지상은 물과 지방질 물질의 상호 반발하는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인쇄는 항상 윤전기로 수행되며, 인쇄되는 재료상에 있는 인쇄 매체가 직접 접촉하여 인쇄되는 것은 아니나, 인쇄되는 물품 위에 상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블랭킷(blanket)이라 하는 고무로 만든 실린더(cylinder) 위에 중간 전사(intermediate transfer)됨으로써 얻는 것이다. 이들 소호에 해당하는 기계류는 블랭킷과 연속 가습 장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가습장치는 금속 실린더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쇄판의 비인쇄 부분을 연속적으로 적셔주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오프셋(offset) 인쇄기는 인쇄용지를 물 모양으로 감아서 공급하거나 낱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소호 제8443.14호와 제8443.15호

활판인쇄(letterpress printing)는 도드라진 인쇄 표면에 잉크를 칠해 압착함으로써 잉크가 전사(transfer)되는 공정이다. 활자는 개개의 문자, 선이나 이미지가 있는 판으로 구성되며, 이들 모두 똑같은 높이로 짜여진다. 그러나 이들 소호에는 곡면인쇄 기계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 제8443.16호

곡면인쇄(flexographic printing)는 단순작업(포장지·서식·광고전단 등의 인쇄)을 하기 위해서 활판 인쇄의 원리를 사용하는 공정으로, 그 속에 있는 인쇄판은 고무나 열가소성(熱可塑性) 재료로 만든 것으로 인쇄실린더(cylinder)(impression cylinder)에 직접 붙여진다. 이들 기계는 다른 인쇄기보다 더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며 ; 이들은 알코올이나 그 밖의 휘발성 용제로 된 잉크를 사용해서 한 가지 이상의 색깔로 인쇄 용지에 연속 인쇄한다.

소호 제8443.17호

그라비어(gravure) 인쇄에 있어서는 인쇄판에 새기거나 식각된 부분에 잉크가 서로 다른 양으로 고여 있어서 인쇄될 표면 위를 압착해 줌으로써 전사되는 것이다. 이 인쇄형태는 선으로 새기거나 식각하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연마된 구리판에 다른 길이로 선을 새겨 넣는 데는 조각칼이나 산(酸)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판의 표면에 잉크를 대충 발라 놓으면, 인쇄판(impression)을 만들어 내는데 충분한 양(量)으로 선상에 모아진다.

그라비어(gravure)인쇄원리는 선을 새기고 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윤전(rotary) 실린더는 판 대신으로 사용한다. 이미지와 표시는 기계적 방법이나 광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구리로 전기도금된 원통형의 판위에 전사된다.

소호 제8443.31호 · 제8443.32호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 부품(예: 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은 이 소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반대로, 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였으나, 접속할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즉, 스위치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84.44 -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 · 늘림(drawing)용 · 텍스처(texture)용 · 절단용 기계

이 호에는 인조섬유의 제조용 기계를 분류하며 섬유의 절단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인조섬유의 방사(紡絲)기** : 한가닥이나 여러 가닥의 필라멘트의 형태로 방출된다. 이러한 기계는 실제에 있어 동일한 유닛을 분리하여 긴 열로 나란히 배열시키도록 되어 있다. 각 유닛은 주로 방사구(紡絲口)나 방사(紡絲) 노즐에 공급하기 위한 정량의 펌프와 여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가닥이나 그 이상의 필라멘트는 노즐에서 나온 후에 채용되는 공정여하에 따라 화학용고제의 용조[예: 비스코스(viscose)법] · 수분사장치를 갖춘 기밀실(예: 구리 암모늄법) · 고온의 공기류(예: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법)이나 냉각실의 어느 하나를 통과하게 된다. 한가닥의 필라멘트나 복합필라멘트사나 절단하여 스테이플파이버(staple fibre)로 만들기 위한 토우(tow)의 어느 것을 생산할 것인가에 따라 노즐에는 한 개나 대단히 많은 구멍(때로는 수천)이 뚫려 있다. 기계의 경우에는 노즐로부터 방출된 섬유가 특수한 장치에 의하여 모아지며 가볍게 꼬아져서 섬유로 형성되는 것도 있다. 또 다른 기계의 경우에는 각 방사(紡絲)기로부터 나온 섬유가 때때로 무수한 섬유로 된 두꺼운 로프 모양(토우)으로 조합되어 절단된 다음에 스테이플파이버로 되는 것도 있다.
- (2) **연신기(drawing machine)** : 필라멘트의 원 길이를 3배나 4배가 되도록 뽑아내는 기계로서 필라멘트의 미분자가 필라멘트 쪽으로 모이게 하여 이의 장력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공정이다.
- (3) **합성섬유사의 텍스처링(texturing)용 기계** : 대개의 텍스처(texture) 공정[전통적인 불연속 방법 · 헛꼬임 · 에지크림핑(edge crimping) · 기어크림핑 · 열풍이나 증기분사 · 니트-데크니트(knit-deknit)]은 크림프사(crimped yarn) · 신축성의 “foam”사 등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 (4) **스테이플파이버 절단기** : 토우를 짧게 절단하는 기계이다.
- (5) **“토우-투-톱(tow-to-top)”기계** : 이 기계는 토우를 스테이플파이버의 길이로 절단하지만 가지런히 있는 섬유열의 평행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계는 카딩(carding)이나 코밍(combing)의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방적이 가능한 톱을 생산하는 것이나 앞에서 설명한 (4)의 절단기의 경우와 같이 스테이플파이버를 흩어지는 덩어리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기계는 때때로 방적기와 결합되어 있으며 “토우-투-얀(tow-to-yarn)”기로 불리기도 한다(제8445호의 해설 참조).
- (6) **인열기(rupturing machine)** : 필라멘트 토우(filament tow)를 인열하는 기계이다. 약간의 필라멘트는 연결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는 있으나 토우로부터 얻어진 실이 스테이플파이버사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부분(전부는 아니다)의 섬유는 어떤 간격으로 인열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인조방직용 섬유(紡絲)에 시공하기 위한 원료준비기계(일반적으로 **제8419호**나 **제8477호**)
- (b) **제8445호**의 드로우(draw)박스과 길(gill)박스
- (c) 연속·불연속 유리섬유나 방직기(**제8475호**)

84.45 -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 합사기(合絲機) · 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방적준비기계

8445.11 -- 카드기(carding machine)

8445.12 -- 코밍기(combing machine)

8445.13 -- 연조기나 조방기

8445.19 -- 기타

8445.20 - 방적기계

8445.3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8445.4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8445.90 - 기타

뒤에 언급되는 제외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섬유공업의 다음 공정에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I) 다음의 공정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직용 섬유의 조제나 준비공정

(i) 실 · 끈(twine) 등의 방적

(ii) 워딩(wadding) · 펠트 · 스테핑(stuffing)재료 등의 제조

(II) 여러 가지 방직용 섬유를 방적 · 연사(撚絲) · 합사(合絲) · 합연사(合撚絲) 등의 작업에 의하여 실로 가공하는 공정(스트립 상태의 종이를 종이실로 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로프 제조용의 특수공정은 **제외한다(제8479호)**.

(III) 슬리머(sliver)나 조방사(roving) · 실 · 끈(twine) 등의 권취공정과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사를 준비하는 공정

(A) 방적할 때까지의 천연의 방직용 섬유나 인조 단섬유의 방적준비기계와 스테핑(stuffing) · 펠트나 워딩 제조용의 이와 유사한 준비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풍력선별기(blower-grader machine)** : 동물의 털을 그 길이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이다. 이 기계는 그 폭이 격실로 갈라진 긴 상자로 되어 있으며 동물의 털은 풍력에 의하여 그 속으로 취입된다. 이 털은 그 크기에 따라 격실로 분배된다.

- (2) 면섬유를 면실·겹질과 그 밖의 불순물로부터 분리하는 기계(예: 조면기)와 그 면실로부터 린터(linter)를 분리하는 유사한 기계
- (3) 타개기(scutching machine)와 이와 유사한 기계 : 물에 담근 후에 식물의 줄기[아마(flax)·마 등]로부터 섬유를 인열하는 기계
- (4) 냥마·냅은 밧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폐섬유를 인열하는 기계 : 냥마 류를 섬유상태로 환원시켜서 카딩(carding)에 적합하게 하는 기계이다[예: 가넷팅 기계(garnetting machine)와 냥마타면 기계]. 다만, 제지용의 냥마 절개기(rag cutter)는 제외한다(제8439호).
- (5) 개장기(bale breaker) : 압축된 원면의 포대를 개장하는 기계이다.
- (6) 자동공급기(automatic feeder) : 이것은 개면기에 보내는 흐름을 고르게 하는 연전(延展) 장치(spreading device)를 갖추고 있다.
- (7) 고해기(beater)와 연전기(spreader)(면섬유의 웹을 다시 정화시켜 개면하는 것) ; 양모 류의 개모준비기
- (8) 양모의 공급과 온수압송용의 기계장치를 갖춘 양모 세척기 ; 그리고 교반장치와 때로는 건조장치를 갖춘 원모 세척기[예: 리바이어턴(Leviathan)]
- (9) 원모염색기 : 방적 전의 모섬유를 덩어리 상태 그대로 염색하는 것이다.
- (10) 카딩(carding)이나 코밍(combing)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모·라미(ramie) 등에 기름이나 화학제제를 침투시키는 기계
- (11) 양모의 탄화기 : 산(酸)액조·과잉액 제거장치와 탄화된 불순물 제거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 (12) 카드기(carding machine) : 면·양모·인조섬유·인피섬유(아마·대마 등) 등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카드기(carding machine)가 있다. 이 기계는 개면기와 고해기에 의하여 시작된 정화를 계속하고 섬유를 선별하여 곧게 하는 것이다. 이 기계는 원칙적으로 톱니 모양의 강선이나 강침을 붙인 직포(침포)로 덮어 씌워진 고정판이나 롤러에 대응하여 작동하며 ; 청정장치는 침이 섬유부스러기에 의하여 막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울카드기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카드기(carding machine)가 다른 재료들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단계에서 사용한다(예: 파쇄카드·중간카드·완성가공카드·응결카드). 섬유는 폭이 넓은 웹이나 보빈(bobbin)에 감기거나 회전빈(bin) 속에 감긴다.

또한 이 그룹에는 펠트제조나 워딩이나 스테핑(stuffing)의 제조를 위한 준비용 카드기(carding machine)도 포함하며 ; 이러한 것은 보통 간단한 형의 것으로서 침포(card clothing)로 덮어 씌워진 톱니바퀴로 되어 있으며 이것 역시 침포로 덮어씌운 평면테이블 위를 요동한다.

- (13) **드로우(draw)박스·길(gill)박스 등** : 이것은 슬리버(sliver)를 뽑아내서 가늘게 하거나 이것을 조합하여 다시 잡아당겨 균질한 물품으로 만들며 ; 이 기계는 카딩(carding)을 한 후에 사용하며 양모의 경우에는 코밍한 후에 사용하기도 한다.
- (14) **코밍기(combing machine)** : 이 기계의 주된 기능은 단섬유를 빗질하는 것이다. 슬라이버는 빗이나 핀 장치에 의하여 작용을 받은 동안 니퍼(nipper)의 사이에 지지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재료를 원료의 상태로 처리(예: 아마를 훑는 것)하거나 카딩(carding)이나 드로잉 아웃(drawing out)한 후의 제조공정의 각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것으로는 아마·대마나 이와 유사한 섬유용의 코밍기(combing machine), 면화용 간헐적 코밍기(프랑스식이나 직선식)와 양모용 원형 코밍기가 있다.
- (15) **아마·황마 등의 연전기** : 이 기계는 아마나 그 밖의 섬유의 속을 조합하여서 이것을 연속 슬리버(continuous sliver)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 (16) **역세척기(backwashing machine)** : 카딩(carding)이나 코밍(combing)을 한 후에 원모로부터 기름이나 그 밖의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이 기계는 따스한 비눗물을 넣은 여러 개의 조로 되어 있으며, 이 조에는 가이드롤러·짜는 롤러·건조용 실린더(cylinder)와 양모를 다시 풀어 헤치는 길 박스(gill box)가 갖추어져 있다.
- (17) **연신기(drawing machine)와 조방기(roving machine)** : 슬리버나 조방사(roving)를 방직하기 위한 최종적인 연신을 함과 아울러 약간 연합작용을 하는 것이다.
- (18) **코일러(coiler)** : 캔(can)을 회전시키도록 설계된 턴테이블(turntab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캔 속에 여러 가지 기계로부터 송출되는 슬리버나 조방사를 모으는 것이고 ; 보통 코일링 장치(coiling device)는 상부에 갖추어져 있다.

(B) 견의 합연(合攪) 견의 준비기

이들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 (1) **누에고치의 외피물을 제거하는 기계와 누에고치를 휘저음으로써 권취될 수 없는 외부의 잔실을 제거하는 기계**
- (2) **누에고치로부터 견사를 손으로 풀기(unreeling) 위한 용기** : 무수한 필라멘트사를 함께 모아서 약간 꼬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생사의 감기(reeling)용 릴(reel)을 갖춘 것도 있으며 ; 이 릴(reel)은 때로는 용기와 분리되어 있으나 용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그 전체가 이 호에 분류한다.
- (3) **생사의 마디나 굵은 부분 등을 제거하는 기계**

**(C) 조방사를 실로 만드는 방적기·연사기(撚絲機 : twisting machine)와
합사를 복합사나 케이블사로 제조하는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 (1) **방적기(spinning frame)** : 조방사(roving)를 다시 연신함과 아울러 꼬아서 실로 만드는 기계이다. 방적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플라이어 링(flyer ring)이나 트래블러(traveller) 등의 방적기구와 회전수직 스피들이나 경사 스피들을 연합시키는 것이며 ; 완전한 방적기는 다수의 이러한 구성요소를 나란히 장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대마·황마 등의 방적기·간헐형 방적기[뮤울(mule)방적기 등]와 연속형 방적기[플라이어(flyer) 방적기·링(ring) 방적기·캡(cap)방적기 등]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수동식의 물레(spinning wheel)도 이 호에 포함한다.
- (2) **“투우-투-얀”(tow-to-yarn)기계** : 이 기계는 투우의 필라멘트를 파쇄하여 조방사로 연신한 다음 실(yarns)로 방적하는 전체 공정의 기구를 갖추고 있다.
- (3) **연사기(撚絲機 : twistng machine)와 합사기(合絲機 : doubling machine)** : 보조적으로 살짝 꼬아주거나 두 가닥 이상의 실을 합연(合撚)하여서 복합사나 케이블사나 끈(twine)을 제조하는 기계이다. 다만, 로프 제조용의 특수기계는 **제외한다(제8479호)**. 이 그룹에 해당하는 기계에는 장식사[예: 루프드 얀(looped yarn)]를 만드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견(silk)이나 인조 섬유 필라멘트를 연합시키는 **합연사기(合撚絲機 : throwing machine)**를 포함한다.

- (4) **마모(馬毛 : horse hair)의 끝과 끝을 함께 결합시키는 기계**

(D) 권사기(捲絲機 : winding or reeling machine)

이 기계는 실(또는 조방사)·끈(twine)이나 스트링(string) 제조용·거래용이나 소매용의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콘(cone)·치즈(cheese)·카드(card) 등에 감거나 볼(ball) 모양이나 타래형 등으로 감는데 사용한다. 정경기(warping machine)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 (E)항을 참조할 것. 로프나 케이블용의 권취기(machines for coiling)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메리야스(knitted) 편물이나 뜨개질(crochet) 편물의 불합격품으로부터 실을 회수하여 권취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직공정에 바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빈(bobbin)에 위사(weft yarn)를 감도록 특별히 설계된 **위사 권취기(weft winder)**도 이 호에 분류한다.

(E)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정경기(warper)** : 직조하기 위한 일련의 실을 일정한 장력 하에서 고르게 그리고 평행 상태로 조정(실의 색이나 형태에 관하여)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이다. 경사(warp)용에 필요한 충분한 실의 수 전체를 하나로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분 부분으로 분할하여 정경시키는 때도 있으며(부분정경) ; 경사는 직기에 걸어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사빔(warp beam)에 직접 감기는 경우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정경기의 롤러나 다른 지지물[예: 보빈(bobbin)]에 감겨지기도 한다.

이 기계는 수많은 권사(捲絲)용 보빈(bobbin)·일련의 코움(comb)·드레드가이드(thread guide)를 지지하는 크리일(creel)과 강력한 드럼식 권취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 이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품은 보통 전적으로 별개의 상태로 되어 있으나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 (2) **정경호부기(warp sizing machine)**[예: 슬래싱(slashing)기계] : 이 기계는 부분 정경·전체 정경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경사가 직조 중 닳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그 경사를 매끄럽게 하여 직조가 용이하도록 일시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교물용 배스·안내롤러시스템·가열 실린더(cylinder)나 열풍건조기와 감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컷마킹(cut-marking)[즉, 가장자리실(selvedge yarn)에 일정간격으로 마크를 하는 것]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타래형이나 정경되지 않는 실(위사를 포함하여) 등의 호부기(sizing machine)는 **포함되지 않는다(제8451호)**.

- (3) **바디에 실을 꿰는 기계** : 직기의 각 잉아(중광 : healds, heddles)나 리드(reed)나 코움(comb)을 통하여 경사를 꿰는 것이다.

- (4) **쓰다 남은 정경사와 새로운 정경사를 잡아매거나 연합하여 접합하는 경사연결기**

이 호에는 제조과정에서 끊어진 경사를 결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사연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48호)**.

- (5) **경사를 정경기 드럼으로부터 빔(beam)상에 모으는 기계**

- (6) **직조하는 동안 실을 쉬어 짜고 공급하는 기계**

- (7) **자수용 드레딩머신(threading machine)**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누에고치를 죽이기 위한 열처리용 기계(**제8419호**)
- (b) 방직용 섬유재료의 건조용 기계(경우에 따라서 **제8419호**나 **제8451호**)
- (c) 원심탈수기(**제8421호**)
- (d) **제8444호**의 기계
- (e) 펠트(felt)나 부직포(nonwoven)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의 기계(**제8449호**)
- (f) 연마용·광내기용·가스처리(gassing)용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기계와 직물 권취용 기계(**제8451호**)
- (g) 원피로부터 동물의 털을 깎는 털절단 기계(**제8453호**)
- (h) 카드 연마기와 코움기의 빗날을 가는 기계(**제8460호**)
- (ij) 칩포(card clothing)에 식침(setting the teeth)을 하는 기계(**제8463호**)
- (k) 카드 실린더(card cylinder) 등에 칩포(card clothing)를 끼우는 기계(**제8479호**)

84.46 - 직기(직조기)

8446.10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 직기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8446.29 -- 기타

8446.3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사[이탄(peat)섬유를 포함한다]나 그 밖의 실(예: 금속으로 만든 실이나 유리나 석면으로 만든 실)을 사용하여 제조방법에 의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직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에 있어서는 경사(warp yarn)와 위사(weft yarn)를 직물로 만들기 위하여 직각으로 교합직조 시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직조방법에 있어서는 경사빔으로부터 풀려 나오는 시트(sheet) 상태의 경사군은 한 가닥 건너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각 그룹은 하네스(harness)에 의하여 제어하며; 이러한 하네스는 두 그룹의 실의 사이에 웨드(shed)로 알려진 개구(angle)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호적으로 경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위사[셔틀(shuttle)로 운반되는 보통의 제조기에 있어서]를 통과시키고 바디에 의하여 바로 위사를 때리는, 말하자면 위타운동이 이루어지며; 두 개의 그룹의 경사의 상하 운동은 하네스에 의하여 역전되어 위사를 도입시키며 또한 다음의 위사를 위한 새로운 개구 운동이 이루어진다. 보통의 직조기(loom)에 있어서는 8개까지의 하네스(harness)가 경사를 올려 주고, 짜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한다.

보다 복잡한 직기는 일층 복잡한 직조 방식을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직조기(loom)에는 다수의 경사의 그룹이나 단하나의 경사까지도 제어하기 위한 경사의 상승운동의 특수한 제어기구[도비기(dobby)·자카드기 등]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어떤 특수한 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특수한 장치[레노기구 경과일(테리기)용장치·능라(broché)직용 스위블식 셔틀(shuttle)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 밖의 직조기(loom)에는 셔틀[또는 셔틀내의 보빈(bobbin)]의 교환 장치를 갖춘 것이 있어서 다른 색이나 다른 종류의 위사를 보내며; 직조기(loom)에는 어떤 다른 기계적 장치나 전기적 장치(예: 필요에 따라 셔틀 내의 보빈을 보급하거나 경사나 위사가 끊어지면 직사를 정지시키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수 장치의 대부분은 직조기(loom)의 직결 부분으로 되어 있거나 보조용의 **떼어낼 수 있는** 부착물(attachments)로서 보통의 직조기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자와 같은 형의 부착물은 직조기용의 것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 직조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나 직조기의 본체와 별도로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8448호**).

직조기(loom)는 보통 평평한 직물을 만드는 것이나 관(管)상의 직물을 제조하는 원형 직조기도 있다. 이러한 직조기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나 전자석(電磁石)으로 작동되는 하나 이상의 셔틀(shuttle)에 의하여 원통상으로 배열된 일련의 경사와 위사가 교합직조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형식의 직조기(loom)는 그 직조기의 형이나 생산되는 직물의 양태에 따라 그 명칭이 붙여진다. 예를 들면, 도비(dobby)기계·자카드기·자동박스모션직기·위사가 압축공기나 물의 분사나 장침에 의하여 삽입되거나 일련의 사출물에 의하여 고정된 보빈(bobbin)으로부터 인출되는 셔틀리스(shuttleless)식 직조기·리본직조기(예: 바아직조기·쥘리히 직조기와 드림직조기)·파일직조기·매듭이 있는 파일카펫(pile carpet)직기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수직기(hand loom)
- (2) 섬유직물의 직기와 **동일한 형식의 것으로서** 와이어클로스나 금속이 섞인 실로 특수직물을 짜는 직기. 이와 같은 형의 직기의 모든 중요한 기계부분은 섬유직물용의 것으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경사빔·개구를 만드는 틀·직각의 개구를 통하여 금속성의 위직이나 위사를 꿰는 기구와 경사나 짜여진 직물을 감는 클로스 빔(cloth beam)을 결합한 기계이다.

다만, 여러 공정에 의하여 무거운 와이어 그릴(grill)이나 망의 형태로 와이어를 교합 직조하도록 설계된 기계는 **제외한다(제8463호의 해설 참조)**.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

**84.47 -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 · 튜
(tulles) · 레이스 · 자수천 · 트리밍(trimming) · 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 · 터프팅(tufting) 기계**

- 원형 편기

8447.11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8447.12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447.20 -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8447.90 - 기타

이 호에는 편직(knitting) · 스티치 본딩(stitch-bonding) · 짐핑(gimping) · 브레이딩(braiding) · 넷팅(netting) · 터프팅(tufting) 등의 방법으로 직물류나 트리밍(trimming)을 제조하는 모든 기계 · 방직하지 않은 조방사(rovings) · 방직용 섬유[이탄(peat)섬유를 포함한다]실과 그 밖의 실(예: 금속으로 만든 실 · 유리로 만든 실이나 석면으로 만든 실)또는 금속선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바탕천에 자수를 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A) 편직기(knitting machine)

이 기계는 2개의 주된 그룹으로 구성된다.

- (1) **환편기(circular machine)** : 이 기계는 똑바른 관(管) 모양의 편물이나 침열의 매편목의 크기를 변경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것[스타킹 · 양말 · 의류(garment)의 소매 · 베레모자 · 터키 모자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펠트화된 편직의 모자 등]을 제조하는 것이다.
- (2) **평편기(flat machine)** : 이 기계는 균일한 폭의 평평한 생지를 만들거나 혹은 침열상에서 편목이 증감함에 따르거나 그 후의 재봉함에 따라 평형이지만 균일한 폭이 아닌 특정형으로 만들어지는 생지(예: 스타킹이나 양말 등)를 제조하는 것이다. 평편기에도 보통의 편직기(예: 코튼식 편기)나 경(經)편기[라셀(Raschel)기 · 밀라니스(milanese)기 · 록니트(locknit)기 등]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는 매우 간단한 형식의 것으로부터 많은 침열을 갖추거나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자카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를 갖춘 대형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이 호에는 소형의 가정용 편직기와 스타킹(stockings)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몇 바늘만 짜여지도록 설계된 기계도 포함한다. 다만, 편직의 끝단부분(edge)를 이루는 루프(loop)를 단순히 **봉합**시킴으로써 두 개의 편직물을 접합시키는 기계는 **제8452호**에 분류한다.

(B)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이 그룹에는 체인 스티칭 공정에 의하여 직물류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의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를 포함한다. 이에 다음을 포함한다.

- (1) 체인 스티칭에 의하여 “경사(warp)”와 “위사(weft)”를 붙이기 위한 바늘 메카니즘(needle mechanism)을 갖춘 **기계**
- (2) 보통 일반적인 직조기에서 이미 생산한 직물 뒷면에 실 고리를 만들어 넣어서, 편직 바늘로 뒷면을 붙이기 위한 **기계**
- (3) **편직-봉합기계(knitting sewing machine)** : 다른 기계[예: 소모기와 가넷기(garnetting machine)]로 이미 만든 영성한 섬유로 된 직물의 봉합고리를 꿰매는 기계로서 재료의 여과용 · 양탄자류의 밑받침 · 절연용 재료 등에 사용하는 단단히 합쳐진 직물 시트(sheet)를 만들어 낸다.

(C) **결절망(knotted net) · 뿔(tulle) · 레이스(lace) · 브레이드(braid) · 트리밍(trimming) · 짐프사(gimped yarn) · 자수천(embroidery) · 터프팅(tufting) 등의 제조용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원단상태나 최종제품(예: 어망)의 형태로 완성 가공하는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망(net)이나 망지(netting)의 제조기계**
- (2) **평편직 뿔(tulle)의 제조기계**
- (3) **무늬편직 뿔(tulle) · 레이스 등의 제조기계**
- (4) **보비너 뿔(bobinot tulle), 보비너(bobinot) 커튼과 보비너의 기계적 레이스 제조용 기계**로서, 기계직(직조)의 레이스는 물론 끈 경사와 위사로 평직의 망이나 망지의 커튼을 제조한다. 다만, 이들 끈 경사와 위사는 직조할 때에 서로 직각으로 교합시키지 않고, 다량의 끈 경사(보빈실 : bobbin thread)를 소형 보빈(bobbin)에 정열시켜 놓고 북(shuttle)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둘러싸도록 하여 맺도록 한다.
- (5) **자수기(embroidery machine)** : 수동 자수기[팬토그래프 북(pantograph shuttle)을 갖춘 자수기]를 포함하며 다수의 침에 의하여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로 된 기포 위에 한 가닥이나 그 이상의 실로 여러 가지 무늬를 수놓는 것이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것 이외의 자수기계에는 자카드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실을 빼내고 남은 실을 묶어서 오픈워크(open work)수를 놓는 사발기도 포함한다.
다만, 체인이나 블랭킹의 스티치용 기계(주로 어떤 직물 제품의 가장자리를 꿰매는데 사용하나 간단한 수도 놓을 수 있는 기계)와 보통의 봉제작업 외에 간단한 수를 놓는 작업이 가능한 재봉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8452호)**.
- (6) **짐핑기(gimping machine)** : 이 기계는 일반적으로 보다 굵은 심(예: 금속선 · 고무사 · 방적하지 않는 섬유나 한가닥이나 그 이상의 거친 실(coarser yarn)의 둘레를 나선상으로 밀착시켜서 한가닥의 실로 짜는 것이다. 또한 이 기계는 가는 전선을 짐프하는 데도 사용한다.
- (7) 여러 가지의 복잡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실이나 방적하지 않는 조방사(roving)[때때로 짐핑(gimping)되어 있다]를 **조합시켜서 여러 가지 트리밍(trimmings)을 제조하는 기계**[조유 제조기 · 훅룸(hook-loom) 등]
또한 고무 ·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호스를 와이어의 편조로 외장하는 기계, 와이어로 관(管) 모양의 조물을 편조하는 기계로서, 앞 항에서 언급한 섬유기계의 특징이 있는 중요한 기계 부분을 **갖춘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

- (8) **방직용 섬유의 실로 단추 · 술(tassel)의 심(core) 등을 피복하는 기계**
- (9) **터프팅(tufting) 기계** : 양탄자류, 매트나 가벼운 물품(침대덮개 · 목욕 후의 화장복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직물 뒷면에 방적사로 된 고리나 술을 만들어 넣는 기계이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

84.48 -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피들 · 스피들 플라이어 · 침포 · 코움(comb) · 방사니플 · 셔틀 · 종광(heald) · 종광 프레임 · 메리야스용 바늘]

-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 도비(dobby)기 · 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 · 복사용 · 천공용 · 조립용 기계

8448.19 -- 기타

8448.20 - 제8444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8445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 침포

8448.32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8448.33 -- 스피들 · 스피들 플라이어 · 스피닝 링 · 링트래블러

8448.39 -- 기타

-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 -- 직조기용의 바디 · 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448.49 -- 기타

- 제8447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8448.5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특히 직기 · 편직기와 자수기)에 대하여 보조적 기능을 하는 모든 보조용 기기류(본체와 보조기계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개별적으로 작동되는 것). 이들 보조기계에는 주기계의 능력을 확대[도비(dobby)기와 자카드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것]하거나 주기계의 본래의 작업에 필요한 특별한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경사정지장치 · 위사정지장치 · 경사결절기(wrap knotting machine)를 갖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 있다.

- (II) 이 호의 기계부분품과 또한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부분품(제16부 총설 참조)
- (III)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나 제8447호나 이 호의 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속품 : 일반적으로 “부속품(accessory)”이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면, 급속히 소모되어 버리거나 다른 작업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 보조기계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방적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보조기계** : 예를 들면, 완전히 감겨진 릴(reel)을 제거하고 빈 릴(empty reel)을 대체하는 자동장치와 빈 릴을 줄지어 세우기 위한 이동기기
- (2) **경사용 빙스텐드나 크릴(creel)** : 호부공정 중이나 경사빔의 감기작업 중에 경사빔을 지지하는 것이며 ; 어떤 경우에는 제직공정 중에 있는 경사빔을 지지하기도 한다.
- (3) **도비(dobby)기와 자카드기(Jacquard)** : 보통의 짜는 방식 이상의 복잡한 직조방식으로 직조할 수 있도록 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도비기는 수많은 하네스[종광(heald)]를 개별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자카드기는 개개의 경사를 따로 따로 들어 올려지도록 조절한다. 도비(dobby)기와 자카드기(Jacquard)는 체인을 구성하는 문판(紋板)에 의하여 조작되는 것이나 많은 경우(특히 자카드기는) 연속적인 체인상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끝과 끝을 함께 짜 맞춘 일련의 적당하게 천공된 카드에 의하여 조작한다. 카드의 서로 다른 천공에 따라 작동되는 이러한 문진(紋栓)이나 많은 침은 경사를 들어 올리는 기구를 작동시킨다. 이와 유사한 기구[버어돌(Verdol)기]는 천공된 일매의 연속지로 조작한다.
- (4) **자카드기에 장치되는 기계** : 한 가닥 이상의 위사가 삽입되는 동안 카드를 동일한 위치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계는 필요한 카드의 수를 줄여서 직조 속도를 증대시킨다.
- (5) **카드철합기(綴合機 : card lacing machine)** : 자카드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몇 매의 카드를 루스(loose)한 체인상으로 조립하기 위한 기계이다.
- (6) **경사정지장치와 위사정지장치** : 경사나 위사가 끊어졌을 때 바로 직기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할 때에 보빈(bobbin)을 보급시킴으로써 위사의 연속적인 공급을 보증하는 **보빈 제어기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조작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종류의 장치를 포함한다.
- (7) **경사연결기** : 시트(sheet)상의 경사의 윗 부분에서 직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소형기계로서 직조공정 중 경사가 끊어지면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제8445호**의 경사를 잡아매거나 꼬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 (8) **레노(leno) 부착물** : 직조공정 중 경사의 몇 가닥을 꼬아서 루프(loop)를 만들어 그 가운데로 위사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기계는 거즈와 그 밖의 레노직물 제조에 사용한다.

- (9) **스위블(swivel)식 셔틀(shuttle) 부착물** ; 능라직(broché) 무늬를 만들기 위하여 스위블 셔틀(swivel shuttle)을 경사의 사이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0) **경파일기(wrap pile motion)** : 코움(comb)의 여러 가지 운동에 의하여 직물(테리 직물 등)의 편면이나 양면에 루프를 형성하는 것이다.
- (11) **스플릿 셀비지 직기(spilt selvedge machine)** : 광폭직기(wide loom)로 동시에 다수의 세폭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 이 기계는 위사를 절단(切斷)하여 세폭 직물로 분할하는 절구의 부분을 꼬아서 짜거나 겹쳐 감치는 형을 삼입시키는 것이다.
- (12) **편직한 생지 정경기에 감겨진 실 등의 결점을 발견하며 결점을 발견한 즉시 기계의 운동을 정지시키는 광전지를 결합한 기기**
- (13) **직기용의 자동 스푼(spool) 교환기**
- (14) **자동 정지장치 속에 얹은 판을 장치하기 위한 기계**
- (15) 정경기용 · 정경호부기(糊付機)용과 편직기용의 **경사보호장치**
- (16) **보빈홀더(bobbin holder)**
- (17) **개면기(開綿機 : opener)용의 스크린과 비터(beat : beating wing)와 기계식 스티치(stitcher)용의 비터(beat)**
- (18) **기계식 스티치(stitcher) · 카드기(carding machine)[또는 코밍기(combing machine)]용의 실린더(cylinder)와 드럼**
- (19) **양모의 탈지기(脫脂機)용이나 가지기(加脂機)용의 교반기(agitator) · 드럼과 실린더(cylinder)**
- (20) **연신대(drawing bench) · 로빙대(roving bench)이나 연속적으로 링(ring)에 실을 꿰는 기기와 이들의 실린더(cylinder)용의 스트렛칭 장치**
- (21) **실의 기계적 분리기** : 단순한 디자인의 것으로 보빈(bobbin) 기계용에 사용하며, 실의 매듭이나 그 밖의 결함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각 기기 중에는 특수 직기(자카드직기 · 자동직기 등)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이 기계 본체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보조기계가 아니라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B) 부분품과 부속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정경작업(warping) 중 보빈(bobbin)을 지지하기 위한 **크릴(creel)**
- (2) 정방기용 **스핀들과 스핀들 플라이어**
- (3) **원심식 권취용 포트**[토프햄(Topham)박스](플라스틱재료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 인조 섬유로 만든 실이 제조되어 나오면서 케이크 모양으로 그 내측에 감겨지는 것
- (4) 코우밍(combing)기용 **코움(comb)** ; **폴러(faller)나 길(gill)**, 즉, 길박스(gill box)에 사용하는 이(齒)가 있는 바(bar)

- (5) 침(wire teeth)을 심어 넣은 **침포(card clothing)**[카드필렛(card fillet)으로 알려진 세폭 스트립 모양을 포함한다]와 톱니 모양의 선으로 형성된 순 철강으로 만든 침포(card clothing)
- (6) **링 트래블러(ring traveller)** : 실에 필요한 꼬임을 주기 위하여 정방기의 링에 부착된 개구상(開口狀)의 링
- (7) **방사(紡絲) 노즐**, 방사구(紡絲口) 등 :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으로 사용하며 귀금속으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다만, 도자제의 것(제6909호)과 유리로 만든 것(제7020호)은 **제외한다**.
- (8) **드레드가이드(thread guide)**(제7020호와 제6909호에 분류하는 유리나 도자제로 만든 것과 제7116호에 분류하는 전체가 마노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 (9) **경사빔(warp beam)** : 직조공정 중 경사가 이 빔으로부터 풀려 나온다.
- (10) **직기용 바디(reeds for loom)**[조절가능한 익스팬션 코움(expansion comb)을 포함한다] : 직조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미 때려진 위사에 대하여 각 위사를 채워 넣기 위한 위타(緯打)운동을 하는 것이다.
- (11) **프레임** : 직기용 종광(heald)을 장착하는 헬드 프레임(종광 틀)이다.
- (12) **셔틀(shuttle)**[실이 감긴 보빈(bobbin)은 **제외한다**]
- (13) **금속으로 만든 종광(heald)과 금속으로 만든 하네스 코드** : 금속 종광(heald)은 경사가 통하는 구멍(control eye)을 가진 평평하거나 두선을 끈 일정한 길이의 철사이다. 금속으로 만든 하네스 코드는 권양(捲揚)기구에 종광 프레임을 접속하는 것이다.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 실이나 방직용 섬유의 코드로 된 종광과 하네스 코드는 **제외한다(제5911호)**.
- (14) **링고(lingo)** : 그 상단에 눈(eye)을 갖춘 얇은 금속성의 추로서 직기의 하네스 코드의 매가닥에 부착되어 있다.
- (15) **침판(needle board)과 바닥판(bottom board)** : 즉, 자카드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천공판(보통, 나무로 만든 것이나 벌크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이다.
- (16) **자카드기용 훅** : 여러 개의 랫치(latch)가 붙은 특수 훅(hook)이 자카드기의 넥코드(neck cord)를 하네스 코드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 (17) **편직기용 침** : 예를 들면, **비어디드(bearded)침(remeshing기용의 stiletto와 그 밖의 침은 포함한다)**, **힌지드(hinged)침**[벨브침이나 블레이드(blade) 침이라 불리며 한 개 이상의 혀(tongue)를 갖추었다]·혀(tongue)가 이동성 슬롯(slot)에 의하여 교체되는 **그루브드(grooved)침·관 형태의 침**, 크로세기용의 **크로세침**
- (18) **슬라이드·코움(comb)·슬라이드바아 등** : 털(tulle)이나 레이스 제조용 기계와 자수기에 사용한다.
- (19) 편직기용 **슬라이더(slides)**
- (20) 플라스틱으로 만든 **드로잉 슬리브(drawing sleeve)**
- (21) **직기용의 셔틀(shuttle)(weaving shuttle)·자수기와 망제조기용의 셔틀(shuttle)**
- (22) **편직기용의 판** : 예를 들면, 제동판·성형판·밀판·철크(chasing)판·쌍날판·실유도판·전달판·자카드 바늘땀(stitch)용의 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매우 다양한 모양을 갖는 것으로 두께가 약 0.1~2mm의 얇은 강판으로 되어 있는 물품이며, 바늘땀(stitch)을 형성하기 위한 침[일반적으로 비어디드(bearded)침이나 힌지드(hinged)침]을 보조하는 것이다.

- (23) 바늘땀(stitch)를 형성하기 위한 부속품 : 예를 들면, 웨이브·웨이브가이드·디자인 그리프(design griff)·스트레처(stretcher)·그루브·핀과 푸쉬로드
- (24) 경사용빔·분할빔과 빔 트레이·자동롤러 빔의 제동기와 조절기
- (25) 코움(comb)용의 날과 이(치)의 판과 서스펜션 혹
- (26) 직기용의 형판
- (27) 셔틀(shuttle) 박스
- (28) 직기에 사용하는 철강으로 만든 부분품 : 고리를 만드는데 사용하며, 절단부분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29) 크로세 기계용의 혹[셔틀(shuttle)이 없는 것]
- (30) 메리야스 기계용의 니들 바(needle bar)·슬라이딩 플레이트·직선 편직기 침용의 캠(cam)과 플레이트·환(丸)편기용의 니들 캠과 니들실린더(cylinder)
- (31) 보비너 뿔(bobinot tulle)기계용의 바늘과 망제조기계용 혹(hook)
- (32) 자수용 바늘과 자수기용 프레임
- (33) 연선기와 보빈(bobbin)기용의 스피들(spindle)
- (34) 정경기와 기계식 정경호부기 용의 실(絲) 제동기(制動機)(장력조절장치)와 코움(comb)
- (35) 도비(dobby)기나 자카드기용 바늘·판·“칼(knife)”과 그리프(grifs)
- (36) 자동셔틀(shuttle)교환기용 매거진(리프팅기·터닝박스 등)
- (37) 씨실 보빈(woof bobbin) 자동교환기용의 매거진
- (38) 자동 경사보호기용 얇은 판(lamella)(thin plate)

*
* *

이 호에는 또한 특히 다음 것도 제외한다.

- (a) 인조섬유의 압출용 펌프(제8413호)
- (b)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 필터(제8421호)
- (c) 재봉기에 사용하는 바늘(제8452호)
- (d) 자카드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기록된 매체(제8523호)
- (e) 로빙이나 슬리버용 용기(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f) 사침대(lease rod)(개구운동의 초기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직기에 사용하는 간단한 일정한 길이의 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것)(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g) 보빈(bobbin)·실패·콕·콘·스풀(spool)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지지구(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84.49 -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펠트(felt)나 부직포(nonwoven)나 이들의 제품의 제조나 완성가공용 기계를 포함하며, 다만, 펠트화된 직물의 제조용 기계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모자제조용 형(型 : block)을 포함한다.

펠트(felt)로 만들기 이전의 준비공정에 사용하는 기계[예: 모 선별용 송풍선별기·개모기(textile opener)·고해기(叩解機 : beater)와 카드기]는 방적용으로 섬유를 준비하는 사전 작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제8445호**에 분류한다.

(A) 펠트(felt)나 부직포(nonwoven)(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펠트기(felter)** : 일반적으로 두 개의 두꺼운 홈이 파진(grooved) 판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판과 왕복운동을 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판으로 구성되며, 그 중간에 카드된 섬유의 웹(web)을 삽입하여 마찰과 고압을 가함으로써 펠트화한다. 이러한 기계에는 웹(web)에 습기를 주고 홈이 파진 판을 가열하는데 사용하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러한 기계의 어떤 것에는 판이 홈이 파진 롤러(fluted roller)로 대체된 것도 있다.
- (2) **비누칠기(soaping machine)** : 부분적으로 펠트화된 것에 비누칠하는 기계
- (3) **축융기(fulling mill)** : 앞에서 설명한 비누칠된 펠트를 두들겨서 완전히 펠트화 한다. 예외적으로 작은 직물이나 편물제품의 축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되며 ; 이와 반대로 주로 직물을 축융하거나 펠트화하는데 사용하는 회전식 축융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51호)**.
- (4) **보강펠트 제조용 기계** : 펠트와 모직으로 만든 지지물(기포)이 가열된 롤러의 작용에 의하여 다같이 펠트화되는 것이며 ; 펠트화하기 이전에 모직물이 아닌 기포에 섬유를 심는 구멍을 뚫기 위하여 일련의 가시가 있는 바늘(barbed needle)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 (5) **펠트(felt)의 완전가공기계** : 펠트를 반반하게 하고 광택을 내며 고르게 깎는 기계 등이 있다.
- (6) **부직포(nonwoven) 제조용 기계**(건조공정·가습공정이나 직접 방적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

(B)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동물의 털을 펠트화하여 모체(hat-shape)를 만드는 기계** : 이러한 기계는 회전하는 브러시나 침포의 회전벨트에 동물의 털을 공급하는 롤러시스템(roller system)으로 구성되어 털이 회전하는 천공된 금속제원추[또는 거즈(gauze)원추] 위에 던져진다. 공기의 강력한 흐름은 원추의 표면에 털을 흡착하여 그 표면에 층을 형성한다.
- (2) **펠팅프레스(felting press)** : 보통 목재의 흠이 파진 면을 갖춘 것으로 한 쪽이나 양쪽이 왕복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서 이미 성형된 모체를 펠트화한다.
- (3) **롤러프레스(roller press)** : 모체의 펠트화를 완성시킨다.
- (4) **연신기(stretching machin)** : 원추형 모체를 더욱 좋게 성형하고 원추형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 (5) **모자챙을 성형하는 기계** : 모자챙은 원추형롤러를 통과시켜서 성형한다.
- (6) **연마기(polishing machine)** : 부석(浮石)이나 연마포로 솟아 나온 털을 제거하는 기계이다.
- (7) **모소기(singeing machine)** : 모체의 표면으로부터 털을 그슬려서 제거하는 기계이다.
- (8) **프루우핑기계(proofing machine)** : 어떤 모체를 셀락(shellac)이나 젤라틴 액에 잠기게 하거나 분무하여 롤러로 압착한다.
- (9) **블록킹 기계(blocking machine)** : 모자챙을 접어 제치고 모체를 최종 제품으로 성형한다.
- (10) **샌드프레스(sand press)** : 형 위에 놓인 모체의 내부를 가열된 모래주머니로 눌러서 앞에서 설명한 가공에 의하여 형크러진 펠트의 표면을 원형대로 가지런히 한다.
- (11) **회전패드(revolving pad)로 펠트의 표면을 반들반들한 광택이 나게 하는 기계**

양모펠트제 모자의 제조기계는 최초의 모체성형공정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그 밖의 동물의 털 펠트제모자의 제조기계와 동일하다. 양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딩기(carding machine : 소모기)로부터 나오는 섬유의 층이 회전하는 이중 원추형의 형으로 구성된 장치에 의하여 모체로 성형된다.

(C) 모자제조용 형(型)

이러한 형은 나무나 금속(보통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몇 가지의 기계에 사용한다.

모자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모자를 잡아 늘이는 형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모자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머리의 윤곽을 뜨는 기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펠트화 하기 이전의 이불솜과 같은 섬유를 압착하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제8420호**)
- (b) 펠트화된 편직물의 모자(베레모·터어키모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편직기(**제8447호**)

84.50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 완전자동 세탁기

8450.12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450.19 -- 기타

8450.2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450.90 - 부분품

이 호에는 **가정형(household)이나 세탁소형(laundry-type) 세탁기**를 포함한다(전기식인지와 중량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 이들은 보통 린넨과 완제품 옷을 세탁하기 위하여 가정, 상업용 세탁소, 병원 등에서 사용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가 세탁물을 통과하여 순환하도록 패들(paddle)이나 회전 실린더(cylinder)가 갖추어져 있으며, 때로는 액체에 고주파 진동을 주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는 또한 세탁 기능과 건조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그러나 드라이클리닝기(dry-cleaning machinery)는 **제8451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8450.11호

이 소호에는 프로그램을 한번 선정해 놓고 사용자의 개입없이 세탁·헹굼·회전탈수를 해주는 세탁기를 분류한다.

84.51 -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 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 · 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 풀기(unreeling)용 · 접음용 · 절단용 · 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 드라이클리닝기

- 건조기

8451.21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1.29 -- 기타

8451.3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8451.40 - 세탁기 · 표백기 · 염색기

8451.50 -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 핑킹(pinking)용 기계 (직물용으로 한정한다)

8451.80 - 그 밖의 기계

8451.90 -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

(I) 방적용 섬유사 · 직물류나 이들의 제품의 세탁용 · 표백용 · 쥐어짜기용 · 클리닝용 · 다림질용 · 염색용 · 건조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계. 그러나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는 **제외한다(제8450호)**.

(II)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나 외관을 개량[예: 전단(剪斷) · 축융이나 광택을 주는 것] 하거나 특수한 새로운 성질(예: 침투나 도포에 의한 방법으로)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각 방적이나 직조한 후 실이나 직물을 드레싱이나 완성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다만, 펠트의 완성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는 **제외한다(제8449호)**.

(III) 방적용 섬유의 직물류의 감기용(reeling) · 풀기(unreeling)용 · 접음용 · 절단용이나 핑킹(pinking)용의 기계

이 호의 대부분의 기계는 방적용 섬유사나 직물을 집어넣거나 여분의 액체를 압착하는데 사용하는 롤러나 교반용 패들(paddle) 등과 같은 간단한 장치가 부착된 큰통 · 탱크 · 수조(水槽)와 그 밖의 용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계는 여러 가지의 세탁 · 표백 · 염색 · 클리닝 등의 공정에 사용하며, 또한 도포나 침지[예: 방수 · 방추(防皺) · 방화 · 방충 · 방부용 등의 약제]를 동반하는 완성가공공정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는 **그러한 기계적 특징을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직물처리용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A) 세탁기·꺾어짜는 기계·다리미질기나 프레스용 기계
(가열장치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 (1) **공업용 세탁기** : 실·직물이나 방직용 섬유의 제품용의 것으로 한정하며 **제8450호**의 세탁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실(사) 타래를 넣고 연속적으로 분사해서 세척하고 건조하는 터널 세탁기와 의류제품용의 페스툰 루프 와셔(festoon loop washer)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직물과 방직용 섬유의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세탁기가 포함되며, 세탁기는 이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물품을 마무리하거나 직물에 먹인 풀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 (2) **짜는 기계(wringer)와 압축틀러(mangle)**

- (3) **셰이커 텀블러(shaker tumbler)** : 축축한 물품의 헝클어진 것을 펴거나 다리미질하기에 적합하도록 펴주는 것으로서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 (4) 의류를 다리미질 하는데 사용하는 **아이언기**와 **스팀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다만, 가정용(domestic use)인지에 상관없이 **제8420호**의 캘린더형의 스무딩(smoothing)기계나 아이언(ironing)기를 **제외한다**.

(B) 표백기(bleaching machine)·염색기(dyeing machine)

여기에는 표백용이나 그 밖의 혼식완성가공공정에 사용하는 **J박스(J-box)**를 포함하며 ;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직립형 아암(arm)이 부착된 용기로 구성되며 형태는 J자형으로서 내부에 스팀제트(steam jet)와 직물을 끌어 들이는 롤러가 부착되어 있다. 직물은 표백액 조를 통과함으로써 미리 침투되며 긴 아암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표백효과를 얻기에 필요한 시간만큼 머물른 다음에 소형의 아암으로부터 끄집어내게 된다.

이러한 그룹의 그 밖의 기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용기형의 기계이며 특수한 직물 제품[예: 타래나 구(求) 모양의 실·보빈(bobbin)에 감은 실 등과 직물이나 그 제품]을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폭의 직물제품의 염색용이나 완성가공용의 기계도 포함되며 ; 이러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은 여분의 액체를 짜내는 일조의 롤러가 결합되어 있는 점이다.

(C) 드라이 클리닝기

이 기계는 물 대신에 휘발유·사염화탄소 등의 액체로 청정하는 것이다. 보통 여러 가지의 장치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로서, 예를 들면, 청정하고자 하는 물품에 액체를 통과 순환시켜 청정하는 클리닝기·원심탈수기·여과기·클리닝기와 저장 탱크가 결합되어 있다. 사용하는 액체의 대부분이 가연성(可燃性)인 것을 고려하여 세탁기나 순환 펌프 구동용으로 보통 방폭형 원동기를 장치하고 있다.

(D) 건조기

이러한 기계는 방직용 섬유사·직물이나 직물 제품의 건조용으로 전용되고 또한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형이 있는데 밀폐된 체임버(chamber)에 물품을 넣어 가열된 공기의 작용으로 건조시키는 것과 직물을 가열된 롤러에 통과시켜서 건조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호에는 직물처리용으로 전용되지 않은 건조기(제8419호)와 원심분리건조기(제8421호)는 제외한다.

(E) 드레싱 기계와 완성가공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머서라이징기(mercerising machine)** : 가성소다로 실이나 직물을 처리한다.
- (2) **비틀링기(beetling machine)** : 롤러 위에 나선 모양으로 부착된 두부(頭部)가 나무로 만든 해머나 주철(cast iron)로 만든 해머의 열이 직물을 두들겨서 강화시키며 ; 조직의 밀도를 증가시켜 직물의 광택을 개량한다.
- (3) **회전식 밀링기(rotary milling machine)** : 이 기계는 경사와 위사의 사이를 좁혀 표면을 부분적으로 펠트화한다.
펠트제조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스톡(stock)이나 해머 밀(hammer mill)은 제외한다(제8449호).
- (4) **픽킹기(picking machine)와 벌링기(burling machine)** : 직물의 결점과 직물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잡물(burr)을 제거시키는데 사용한다.
- (5) **기모기(raising machine)** : 직물 표면의 섬유를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기계는 본질적으로 티젤(teasel)을 부착할 수 있는 판상물품(slat)이나 틀을 부착하거나 가는 와이어 포인트가 부착된 소형의 실린더(cylinder)를 장착한 대형의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된다.
- (6) **직물의 이면을 두들겨서 표면의 털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기계**
- (7) **크로핑기(cropping machine)** : 기모(起毛 : teasing) 공정으로 털을 일으켜 세운 직물의 표면을 평탄하게 자르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계는 벨벳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한다. 울 통불통한 대(받침대)나 롤러를 사용함으로써 무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8) **라티네기나 리플링기(ratine or rippling machine)** : 기모한 직물 위에 섬유의 속을 로울링(rolling)과 컬링(curling)함으로써 물결 모양이나 비드(bead) 모양의 효과를 내는데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플러시(plush)로 입혀진 테이블과 그 위에서 다른 테이블(고무·펠트나 금강사로 입혀진 것)이 짧은 진동을 하거나 회전운동을 하면서 요동하게 되어 있다.
- (9) **브러싱기(brushing machine)** : 기모나 잘라 낸 후의 직물을 솔질하는 것으로서 회전하는 원통브러시로 이루어져 있다.
- (10) **모소기(singeing machine)** : 실이나 직물의 털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며 가열된 실린더(cylinder)·만곡된 판이나 가스의 불꽃(gas flame) 위로 직물을 빨리 통과시킴으로써 작업이 이루어진다.
- (11) **끈·타래로 된 견사나 견직물용의 광택기**

- (12) 직물류의 표면을 반들반들하고 평탄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에머리(emery) 기계**
- (13) **원통형의 프레스(cylindrical press)** : 평탄한 대나 반원형의 대 위에서 표면에 광택을 내는 기계.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제8420호)와 범용(汎用)성의 액압식 프레스(제8479호)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 (14) **디카타이싱기(decatizing machine)** : 직물의 최종적인 완성가공과 세트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물을 증기처리하며 ; 또한 이와 유사한 기계에는 증기처리에 의하여 실이나 직물을 조질(調質)하는 것도 있다.
- (15) **폭출기[stentering(tentering) machine]** : 직물을 적당한 폭으로 회복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 (16) **방수축 가공기** : 직물의 위사의 눈(目)을 더 근접시켜 사후에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가공하는 기계
- (17) **도포기(coating machine)나 침투기(impregnating machine)** : 실이나 직물류의 표면에 특수한 도료를 도포하거나 특수한 조제품(예: 검·전분·사이즈·왁스·플라스틱·고무나 방수제)을 침투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계이다. 이 호에는 리놀륨과 같은 바닥갈개를 제조함에 있어 직물·관지 등에 도포하는 기계와 앞에서 설명한 (B)의 뒷부분에 언급한 드레싱기도 포함한다.
- (18) **장식사 제조기계** : 방적과 합사(合絲)공정 다음에 특수한 효과를 내는 기계(예: 젤라틴이나 왁스로 된 작은 장식구슬을 갖춘 장식사를 만드는 기계)

**(F)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직물의 접기(folding)용 기계와 감기(reeling)용 기계** : 직물을 길이나 폭으로 접거나 지지물에 롤 모양으로 감는(reeling) 기계나 ; **접는 장치나 감는 장치가 결합된 검사기**로서 직물의 결합을 검사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계에는 측정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 (2) **직물절단기와 직물 핑킹머신(pinking machine)**(의류의 원형이나 부분품을 재단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
* *

다음의 것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 (1) **외의(外衣)용의 스티밍(steaming)기구**(증기 다림질용의 스팀 인형, 상부인형)
- (2) **이미 다림질해 놓은 린넨**[예: 손수건·시트(sheet)·식탁보]의 **접음용 기기(테이블 등)**
- (3) **모직물을 표백이나 염색하기 전에 깨끗이 씻기 위하여 끓이거나 세척하는 기기**
- (4) 표백이나 염색하기 전에 **직물로부터 수지를 제거하는 기계**

- (5) 표백이나 염색하기 전에 소다나 칼륨과 같은 잿물로 **직물을 처리하는 기계**
- (6) 실·직물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류의 물품의 **가습용의 스팀기**
- (7) **형 세팅(form setting)기와 형 픽싱(fixing)기(열경화)** : 스타킹이나 양말의 예비성형이나 성형용 기계를 포함한다.
- (8) **압축공기식 타이어용 직물의 침투와 인발용 기계**
- (9) **타자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용의 직물리본에 잉크를 칠하는 기계**
- (10) **직물의 끝을 풀어내는 기계**
- (11) **직물의 플로킹(flocking)용 기계**. 예를 들면, 정전(靜電)식의 플로킹(flocking)용 기계
- (12) **직물의 주름 잡는 기계**
- (13) **양탄자류 청소용 기기** : 양탄자류를 그 자리에 두고 카펫에 세정용액을 분사한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기기이며, 호텔·모텔·병원·사무실·식당·학교와 같은 시설(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 (a) 오토클레이브(autoclave)·스팀재킷을 갖춘 조(槽)(steam jacketed vat)와 그 밖의 가열장치로서 직물의 열처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제8419호)
- (b)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광택용·염출용·평활용·부조용·파문무늬용 등)와 그 실린더(cylinder)(제8420호)
- (c) 제8421호의 원심 탈수기와 그 밖의 원심 분리기

84.52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 가정형 재봉기

- 그 밖의 재봉기

8452.21 -- 자동식

8452.29 -- 기타

8452.30 - 재봉기용 바늘

8452.90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A) 재봉기(sewing machine)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head)**는 두 매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나 가죽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이다. 이 호에는 보통 재봉 이외에 장식작업(예: 자수효과)이 가능한 재봉기도 포함하며 ; 그러나 자수 작업**만**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계[드로운 트레드 기계(drawn thread machine)를 포함한다]는 **제8447호**에 해당한다. 또한 제본용 재봉기는 **제8440호**에 분류하고 편직-재봉기와 그 밖의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는 **제8447호**에 분류한다.

특정한 자수 작업을 행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재봉기는 일반적으로 두 가닥의 실로 작동하며 한 가닥을 바늘에 끼우고 다른 가닥은 북(shuttle)에 의하여 직포의 하면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재봉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바늘과 하나의 북을 갖고 있으나 여러 개의 바늘과 북을 갖춘 것도 있다[예: 이중봉(二重縫)이나 삼중봉용의 것].

전동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는 가정용인지 그 밖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가정이나 양복점·양장점 등에서 사용하는 보통 재봉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재봉에 전용되는 특수 재봉기도 포함한다.

- (1) 장화나 구두의 제조용과 수리용이나 그 밖의 가죽용으로 사용하는 재봉기
- (2) 단추 구멍을 꿰매는 재봉기 ; 이 기계에는 단추 구멍을 뚫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 (3) 단추 다는 재봉기

- (4) 밀짚모자용 재봉기
- (5) 모피용 재봉기
- (6) 밀가루나 시멘트 포대 등에 내용물을 충전한 후 봉합하는 재봉기 ; 이 기계는 매달려 있는 것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북(shuttle)을 갖추고 있지 않다.
- (7) 포장의 틈을 봉합하는 재봉기
- (8) 포대 제조용과 모포·양탄자류 등의 가장자리를 감치는 데 사용하는 재봉기
- (9) 헴 스티칭(hem-stitching) 재봉기와 모포의 가장자리를 봉합하는 재봉기
- (10) 편직된 의류편(片)의 가장자리를 봉합하는 재봉기

이 호의 재봉기의 어떤 것은 재봉 이외에 다른 작업(예: 식물·가죽·종이 등을 절단·장식하거나 구멍을 뚫는 것과 주름잡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B)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

예를 들면, 테이블이나 캐비닛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탠드와 그 부분품[서랍·신대(伸臺 : extension board) 등]과 밀판과 덮개는 분리하여 제시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주로 보호용이나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케이스가 본체와 분리하여 제시될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C) 재봉기용 바늘

이 호에는 전술한 여러 가지 재봉기용 바늘은 물론이고 재봉기형의 바늘(보통 끝 가까이 구멍이 있는 것)이라면 제8440호의 재봉기용이나 제8447호의 자수기용의 것도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예: 스탠드와 북(방추)]도 포함한다. 다만, 보빈(bobbin)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완구인 재봉기는 제외한다(제9503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452.10호

소호 제8452.10호는 다음의 재봉기와 재봉기 머리부분에 적용되며, 이들은 모두 적어도 박음질 작업을 할 수 있다.

- (a) 발이나 손으로 작동되는 재봉기
- (b) 120와트 이하의 출력을 갖는 전동기를 결합한 재봉기
- (c) 모터(motor)를 제시하지 않은 동력구동식의 재봉기로서 재봉기 두부의 무게가 16kg 이하인 것

이 소호는 또한 구조와 수행능력으로 보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오버록(overlock)”이나 “서어저(serger)”라 불리우는 출력 120watt 이하의 전동기가 내장되어 있고 3, 4나 5가닥의 재봉사로 작동하는 재봉기와 재봉기의 머리부분에도 해당한다. 이들은 박음질 이외의 작업을 할 수 있으나 구동속도가 일반적으로 분당 1,500땀 이하라는 점에서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소호에는 실 한 가닥으로 체인스티치 하는 방식으로 재봉하는 손에 절만한 크기의 배터리작동식의 재봉기도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소호에는 단추 구멍을 내는 것이나 채워진 백을 봉합하는 것과 같은 특수 기능에 사용하는 재봉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84.53 - 원피나 가죽의 유평(柔皮)준비기 · 유평(柔皮)기 · 가공기계, 원피 ·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 · 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 원피 · 가죽의 유평(柔皮)준비기 · 유평(柔皮)기 · 가공기계

8453.2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8453.80 - 그 밖의 기계

8453.90 - 부분품

이 호에는 원피(hide, skin)나 가죽의 유평(柔皮)준비기 · 유평(柔皮)기(양피화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여기에 잇달은 완전가공작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또한 원피 · 가죽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선하는 기계(예: 가죽 신발 · 장갑이나 여행용구의 제조용의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제8452호**에 해당되는 재봉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I) 원피나 가죽의 유평(柔皮)준비기 · 유평(柔皮 : tanning)기 · 가공기계

이 그룹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기계는 실제로 원피(hide, skin) 처리공정의 여러 가지 단계 [예: 세척 · 유평(柔皮)준비 · 염색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공정]에 사용한다. 이러한 기계에는 교반기 · 회전기구나 가죽을 조작하는 장치가 결합된 특수조(槽) · 드럼이나 세척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탈모기(de-hairing machine)** : 화학작용에 의하여 부드럽게 된 털을 원피로부터 제거한다.
- (2) **탈육기(fleshing machine)** : 원피(row skin)로부터 육질과 지방 등을 제거한다.
- (3) **해머밀[hammer mills(faller stock)]과 원통형의 비터 밀(cylinder beater mill)** : 이러한 기계의 해머나 홈이 파진 회전 실린더(cylinder)는 세척 · 유평(柔皮) · 급유나 침투 작업 중이나 가죽에 사용한다.
- (4) 세공을 열고 표면에 주름이나 결점(흠)을 제거하는 **모피(skin)와 가죽의 신장용 기계** ; 육(肉)의 측면을 평탄하게 하고 다른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스크레이핑기(scraping machine)** ; 가죽을 코르크나 고무를 입힌 실린더(cylinder)의 작용에 의하여 처리하는 **연화기(軟化機 : softening machine)**
- (5) **해머링기(hammering machine)** : 소형의 해머로 가죽의 표면을 두들겨서 오물과 여분의 습기를 제거하고 그레인을 정리한다.
- (6) 가죽을 **다지거나 경화(硬化)하거나**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하는 **해머기(hammer machine)** (예: 구두창용이나 기계 벨트용)
- (7) **셰이빙(shaving)기와 스플리팅(splitting)기** : 칼로 전피에 걸쳐서 동일한 두께로 하거나 가죽을 여러 층으로 분할한다.

- (8) **에머리기(emery machine)** : 예를 들면, 가죽의 표면을 거칠게 하여 벨벳 효과를 만드는 것이 있다.
- (9) **브러싱기(brushing machine)** : 예를 들면, 가죽을 청정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후 벨벳 효과를 높이는 것이 있다.
- (10) **가죽광택기** : 마노연마석이나 마노나 유리로 만든 소형 롤러로 가공하여 가죽의 광택을 낸다.
- (11) **그레이닝기(graining machine)**

이 그룹에는 **모피를 처리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피는 앞에 설명한 바와 유사한 기계에 의하여 유연 전(前)처리와 유연 처리를 받으나 이 호에는 또한 털 그 자체를 처리하는 기계[예: 균등한 길이로 털을 정돈하는 기계, 긴 털을 제거하는 기계, 털을 컬링(curling)·코밍(combing)·브러싱이나 염색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제8419호**의 건조기
- (b)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예: 가죽의 평활화·광택이나 그레이닝용의 것)(**제8420호**)
- (c) 원심분리형의 건조기(**제8421호**)
- (d) 염료·바니시 등의 분무용 기기(**제8424호**)
- (e) 도살장에서 사용하는 폐지용 탈모기(**제8438호**)
- (f) 범용(汎用)성의 프레스(press)(**제8479호**)
- (g) 원피의 측정기기(**제9031호**)

(II)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

이 그룹에는 원피·가죽으로 만든 제품(신발·장갑·재킷과 그 밖의 의복·마구·서적커버·핸드백·여행용구)을 제조나 수선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스카이빙기(skiving machine)와 박피기(paring machine)** : 봉합이나 접착하기 전에 가죽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필요한 부분을 얇게 가공하는 것
- (B) **가죽을 특정 모양(예: 구두의 갑피·장갑의 반가공품·혁대 등)으로 절단하는 기계** : 보통 두 개의 주요한 형이 있는데 하나는 밴드나이프기(band-knife machine)이며, 다른 하나는 클릭킹 프레스[clicking press(다이스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것)]이다.
- (C) **천공기(perforating machine)** : 구두코, 장갑의 뒷면 등의 장식용의 것

(D) **장화나 구두 제조기계** :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봉사(縫絲 : stitches)가 통할 수 있는 홈을 파는데 사용(예: 구두창의 가장자리 부근)되는 **채널 커팅기(channel cutting machine)**와 ; 재봉 전후에 **홈을 개폐하는 기계**
- (2) **풀링오버기("pulling-over machine")**와 **라스팅기(lasting machine)** : 제화용 골 위에 갑피를 덮고 안창에 갑피를 못질하거나 붙이는 기계
- (3) 제화용 골 위에 올려놓은 후에 갑피의 가장자리와 안창의 바닥을 **두들기는데 사용하는 기계**
- (4) 안창과 갑피에 바깥 창을 **붙이는 기계**(예: 접착기계 · 구두창 접착기계)
- (5) 구두창에 뒷굽을 **고정하는 기계**
- (6) 구두창과 뒷굽의 가장자리를 **정돈하고 평활하게 하거나 완성이공하는 기계**
- (7) **러프닝(roughening) 기계** : 구두창에 갑피를 붙일 때 더욱 잘 붙게 하기 위하여 와이어 브러시나 연마벨트로 갑피의 광택 부분을 제거하는 기계
- (8) **광택과 완성이공기** : 일련의 연마석 · 광택브러시와 펠트로 구성된 것으로서 구두의 갑피를 잘 손질(양호한 면으로 가공)하는데 사용하며 ; 이 호에는 장화와 구두 수선공에 의하여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기계도 포함한다.

(9) **장화나 구두의 신장기**

그레이닝(graining) · 절단 · 천공 · 세천공(細穿孔 : pricking)기와 같은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어떤 것은 장화와 구두제조용 기계일지라도 가죽 이외의 재료[예: 판지 · 모조가죽(imitation leather)이나 플라스틱]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지만 ; 그러나 이러한 기계가 주로 원피 · 가죽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a) 장화나 구두용의 골(last)(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제4417호**)
- (b) 목제화 · 목제의 구두창 · 뒷굽 등 목제가공기계(**제8465호**)
- (c) 자동식 구두 닦는 기계와 아이릿팅기(**제8479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이들 기계에 사용하는 다이스(dies)와 그 밖의 호환성 공구(interchangeable tool)도 분류한다.

84.54 - 전로 · 레이들(ladle) · 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아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 8454.10 - 전로
- 8454.2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 8454.30 - 주조기
- 8454.90 - 부분품

(A) 전로(轉爐 : converter)

이러한 것은 노내(爐內)에 용융(鎔融 : melted)되었거나 고온으로 된 재료를 산소의 강한 기류에 의하여 유동시켜서 금속을 교환이나 정제하는데 사용하며[예: 철을 강(鋼)으로 전환하거나 구리나 니켈의 매트(matte)와 방연광(方鉛鑛) 등을 정제하기도 한다] ;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탄소 · 망간 · 실리콘 · 인과 같은 용해물의 대부분이 산화되며 가스나 용융(鎔融)된 슬래그(slag) 상태로 제거한다. 이러한 산화 작용은 금속의 온도를 더욱 증가시킨다.

전로(轉爐 : converter)의 가장 일반적인 형은 외부는 무거운 강철판으로 구성되고 그 내부는 내화재료로 내장된 배(pear)형이나 원통형의 용기이다. 산소는 전로 윗부분[LD전로(Linz-Donawitz)]에 있는 랜스(lance)에 의하거나 전로 바닥[OBM전로(Oxygen Bodenblasende Maximilianhütte)]에 있는 노즐(nozzle)을 통하여 공급한다. 두 개의 조합형도 있다.

그 밖의 형에는 양측에 통풍관(tuyère)이 결합된 전로 · 회전식 원통형 전로 · 내부에 투입물을 지지하는 금속격자를 갖춘 원추형 전로(구리 매트를 처리하기 위한 것)를 포함한다.

(B) 레이들(ladle)

레이들(ladle)은 노(爐)로부터 용융(鎔融)금속을 받아 내고 용융(鎔融)금속을 전로(轉爐)나 주형(mould)에 주입하는데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내화재료로 내장된 간단한 개구형 용기로서 보통 기울이거나 주입하기에 용이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바퀴가 부착된 것도 있다. 보통 기계적으로[예: 크레인(crane)에 의하여] 취급되나, 이 호에는 또한 수동으로 조작되는 주물용의 레이들을 포함한다. 다만, 주석 세공인 · 금 세공인 등에 의하여 사용하는 소형의 수지식 레이들은 제외한다(제7325호나 제7326호).

(C) 잉곳(ingot)용 주형

이들 잉곳(ingot)용 주형에는 한 개나 이등분으로 된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으며 그 속에서 용융(鎔融 : molten) 금속이 잠정적으로 예를 들면, 잉곳(ingot) · 피그(pig) · 슬래브(slab) 등의 형으로 주조한다.

그 밖의 주형(예: 제품 주조용)은 일반적으로 제8480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주형은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통 철이나 강(鋼)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탄소·흑연이나 도자재료로 만든 잉곳(ingot)용 주형은 **제외한다**(각각 **제6815호**와 **제6903호**).

(D) 주조기(casting machine)[야금(metallurgy)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주형을 연속적으로 충전·냉각하거나 비우는데 사용하는 기계(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나 체인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용융(鎔融 : molten) 금속의 고른 성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형을 진동이나 가볍게 두들기는 장치를 결합한 것도 있다.
- (2) **압력주조기** : 이것은 주로 양분된 두 개의 주형을 고정하는 두 개의 조절가능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체 금속은 저장기로부터 주형 안으로 밀어 넣어지는데 저장기 안에 있는 액체 금속의 자유 표면에 대한 압축공기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하거나 액체 금속이 가득 찬 밀폐된 저장기 안으로 피스톤(piston)을 삽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밀어 넣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계는 금속의 응고를 촉진하기 위한 냉각장치와 주형으로부터 주조품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결합한 것도 있다. 이러한 주조기에는 주로 소형의 비(非)철금속 제품을 주조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소결(燒結 : sintering)방법으로 가압 하에서 금속가루를 성형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62호)**.

- (3) **원심주조기** : 용융(鎔融) 금속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통형의 주형에 도입되며 ; 금속은 주형의 측면에 투사되어 관(pipe)형으로 응고한다.
- (4) **연속주조기** : 이들 기계에 있어서는 강(鋼)이 레이들(ladle)로부터 배분기 속으로 운반되고 배분기에서 각각의 다른 주조공정으로 공급한다. 이들 공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밑바닥이 없고 냉각장치가 있는 잉곳(ingot) 주형,
 - (b) 잉곳(ingot) 주형 바깥쪽에 장치한 주조금속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물을 분사하는 장치,
 - (c) 응결된 금속을 규칙적으로 추출해내는 컨베이어 롤러시설,
 - (d) 배출장치에 의하여 수반되는 절단 기계장치

이들 그룹의 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주형(mould)은 보통 **제6815호·제6903호**나 **제8480호**에 해당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84.55 -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8455.10 - 관 압연기
 - 그 밖의 압연기
- 8455.21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 8455.22 -- 냉간(冷間) 압연기
- 8455.30 - 압연기용의 롤
- 8455.90 - 그 밖의 부분품

(I) 압연기(rolling mill)

압연기(rolling mill)는 주로 금속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일련의 롤러로 구성되어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이고 ; 금속은 롤러에 의하여 주어진 압력에 의하여 압연이나 성형되는 동시에 금속의 조직을 바꾸어 그 품질을 개선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반 기능 이외에 금속 표면에 무늬를 넣거나 적층판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금속판을 함께 압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속 **이외의** 재료를 압연하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는 **제외한다(제8420호)**. 그 밖의 로울기[예: 종이 지지물 위에 금속박(箔)을 접착하는 것](제8420호)·벤딩(bending)기·접기용(folding)기·교정기(straightening)나 플래트닝(flattening)(제8462호)는 전술한 금속압연기로 취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

압연기(rolling mill)에는 설계된 특정의 압연 작업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이 있다. 즉,

- (A) 두께를 줄이고 이에 부응하여 길이를 늘이기 위하여 압연하는 것[예: 잉곳(ingot)을 압연하여 블룸(bloom)·빌릿(billet)이나 슬래브(slab)로 하는 것 ; 슬래브를 압연하여 판·스트립 등으로 하는 것]
- (B) 블룸(bloom)·빌릿(billet) 등을 압연하여 특정 단면의 형으로 만드는 것[예: 봉·로드·앵글·형재(shape)·섹션(section)·거더(girder)·철도 레일을 만드는 것]
- (C) 관(管)을 압연 제조하는 것
- (D) 차륜용 반제품이나 차륜용 테의 반제품을 압연하는 것(예: 철도차량의 차륜용 테를 성형하는 것)

대부분의 압연기(rolling mill)는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언급된 작업용으로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기계의 본질적인 요소는 “스탠드(stand)”로 알려져 있으며 큰 금속으로 만든 하우스(housing) 내에 수평으로 된 하나의 롤러 위에 다른 로울을 설치한 두 개, 세 개나 네 개의 로울로 구성되며, 금속은 로울 사이의 조절가능한 간격을 통과한다. 3단식(three high)과 복 2단식(double two high)의 스탠드에 있어서는 금속은 두 개의 롤러 사이를 통과한 후 다른 롤러 사이를 통과하며 ; 어떤 스탠드는 작업하는 롤러에 부가적인 힘과 일관성을 주기 위한 지지체로서 작용하는 두 개 이상의 로울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압연기는 서로 나란히 서로 엇갈리게 하거나 세로로 나란히(예를 들면, 판의 연속 압연기) 배열되는 여러 개의 스탠드(stand)로 구성되며 ; 롤러의 속도와 간격은 점진적으로 금속을 압하(壓下)하기 위하여 조절된다.

어떤 압연기(rolling mill)는 재료의 가장자리를 가공하거나 특정한 형재(形材 : section) [예: 거더(girder)]를 제작하기 위한 사이드 롤러(side roller)를 갖춘 것도 있다.

관상 제품(슬래브·관·스트립 등)용의 롤러는 평탄하다(간단한 용기모양을 내는 특수한 완성가공 롤러를 제외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예: 앞의 (B)의 작업용] 압연은 롤의 폭 전반에 걸쳐 행하여지지 않으며 작용 롤러는 두 개의 롤러 사이에 특수한 형의 간격(gap)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표면에 홈이 파져 있다. 이 롤러를 통과하는 금속은 간격(gap)의 형으로 형성되며 그러한 간격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키면 점차적으로 형이 변화되어서 금속은 소요의 단면형으로 가공한다.

앞에서 설명한 종류의 압연기는 크기에 있어서 귀금속 압연용의 소형의 기계로부터 강(鋼)용의 대단히 큰 압연기까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압연기의 대부분은 열간(熱間)압연용이나 어떤 완성 가공용 압연기(특히 박·시트나 스트립용)는 냉간(冷間)에서 금속을 압연한다.

앞의 (C)와 (D)에서 언급한 형태의 금속 압연기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1) 빌릿(billet)에 구멍을 뚫는 만네스만(Mannesmann)기와 이와 유사한 기계 ; 가열된 빌릿(billet)를 회전시키고 구멍 뚫는 심축을 꼭 눌러서 조관(祖管)을 형성하는 큰 경사 롤러를 갖추고 있다.
- (2) 구멍 뚫린 빌릿(billet)용 압연기 : 두께를 감소시키고 길이를 늘려 만족할만한 관벽면(管壁面)을 갖춘 롤러나 원추형 롤러의 사이에서 가공한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과구를 주기 위하여 편심(偏心)적으로 파진 홈을 갖춘 롤러를 사용한다[스텝 롤링(step rolling)].
- (3) 관(管)의 완성가공 압연기 : 관 벽의 두께를 다듬거나 감소시키고 관경을 감소시키거나 완전한 원형의 단면으로 사용한다. 이 기계는 내부 심축을 갖추거나 갖추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다.
- (4) 대구경 주강관(大口徑 鑄鋼管)의 관 벽을 압연하는 레이디얼(radial) 압연기 : 관은 외측에서 작용하는 여러 개의 롤러와 내측에서 이와 대응하는 롤러 사이를 회전한다.
- (5) 차륜이나 원반 압연기 : 보통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된 일련의 원추형이나 원통형의 롤러로 구성되며 그 사이에서 조악하게 성형된 차륜이 회전하며 ; 차륜의 여러 가지 부분[예: 철도 차량의 차륜용 플랜지(flange)]은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필요한 형으로 가공한다. 이와 유사한 기계는 철도차량의 차륜용 플랜지(flange)가 부착된 타이어의 성형이나 특정한 철도용 레일의 성형용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금속 압연기의 조작에는 다음과 같은 대량의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즉, 유도장치·롤러테이블·조작장치·재열로(再熱爐)·산(酸)세척 탱크·스트립 감는 기계·전단기와 기계식 톱·냉각베드·칭량기·마킹기·교정기(직선과 평면교정)·제어장치[기계식·전기식(電氣式)이나 전자식(電子式)] 등이 있다.

(II) 롤(roll)과 그 밖의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금속 압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에는 금속 **압연기의 롤**이 있다. 이러한 롤(rolls)은 길이와 직경에 있어 상당히 다양하며 압연기의 롤은 길이가 약 30cm부터 520cm까지, 직경이 약 18cm에서 137cm까지 있다. 이러한 롤은 주철(cast iron)·주조나 단조(鍛造 : forging)한 단철(鍛鐵)로 만들어지며, 보통 그 표면이 특별히 경화되고 정확한 치수로 면밀하게 기계가공되며 ; 롤은 평탄하게 되어 있거나 필요한 통과구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양의 홈(溝)이 파진 것도 있다. 개개의 롤의 양단에는 롤 끝의 목(neck)에 때로는 금속 압연기의 하우징(틀)에 부착하기에 적합한 특별한 형태로 된 것도 있다. 롤 목(roll neck)의 외측에는 구동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워블러 엔드(wobbler-end)로 절삭되어 있다.

84.56 -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456.11 --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456.12 --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456.2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456.3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8456.4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8456.50 - 워터제트 절단기

8456.90 - 기타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
-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
-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

이 호는 또한 아래의 (H)에서 기술하고 있는 워터제트절단기(water-jet cutting machine)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8486호**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기계는 **제외한다**.

- (i)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로서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나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
- (ii)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로서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나 수리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
- (iii) 반도체 재료 상의 건식 식각 패턴용(dry-etching pattern) 기계

앞에서 설명한 기계의 예로는 (i) 반도체 결정에 구멍을 뚫는 레이저빔 기계류와 (ii) 반도체칩을 자르거나 전자집적회로용 세라믹 기판을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초음파 처리 기계류가 있다.

(A)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루비)의 기계·금속이나 단단한 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여러 가지 고저항 재료 위에 새기는(숫자·문자·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

레이저 방식으로 작동되는 공작기계의 본질적인 측면은 용융·연소나 증발작용을 통해 재료를 제거[“용제(融劑 : ablation)”라고도 한다]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작업대상물에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진 강렬한 레이저 빔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공작기계에서는, 레이저 빔이 저압 워터제트와 한 쌍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워터제트는 레이저 빔을 안내하고 부스러기를 제거하며 재료를 냉각하는 역할을 한다.

이 그룹의 또 다른 공작기계는 재료의 제거에 사용하는 빔의 형태에 따라 레이저 빔 공정으로 작동되는 공작기계와 차이가 있다.

(B)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

초음파 가공기계(ultrasonic machine-tools)는 초음파 진동에 의하여 진동하는 펀치(punch)와 액체 중에 부유하는 연마제로 이루어진다. 이들 기계는 연마재 순환장치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 (1) 다이아몬드 다이(die)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다이 가공용 ;
- (2) 광석의 천공이나 성형용 ;
- (3) 유리에 음각을 새기는(engraving) 용도로 사용 ;
- (4) 밀링(milling)용·브로칭(broaching)이나 폴리싱(polishing)용

(C) 방전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

이러한 형태의 기계가공 원리는 두 개의 금속성 전극(가공물과 공구) 사이에서 매 초당 수십만 사이클로 아주 짧은 순간의 급 방전에 의하여 금속이 제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그룹에는, 예를 들면, **고주파전기방전 절단기계**를 포함한다.

(D) 전기화학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

이러한 형태의 기계가공원리는 전기분해에 의하여 금속이 제거되는 현상이다. 가공물(양극)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똑같이 공구(음극)에도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 양극을 음극성 침전이 불가능한 전해물 속에 잠기도록 하면 이로 인하여 양극분해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전해연마기기** : 현미경이나 금속시험용의 시료 연마용에 사용한다.
- (2) **전해절삭기**(절삭·절단 공구용의 것) : 칩브레이커 그루브(chip-breaker groove)의 절단용이나 금속탄화물 판의 절단용의 것으로 ; 이러한 기계는 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한다.
- (3) **양극분해에 의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톱니바퀴의 버(burr)를 제거하는 기계**
- (4) 평면 등을 **정밀하게 완성가공하는 기계**

(E) 전자빔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

전자빔 기계가공은 극히 작은 표면 위의 가공물에 전자를 쏘이는 것인데, 이 전자는 음극(cathode)에 의하여 방사(放射)되고(emitted), 강렬한 전계(電界 : electrical field)에 의하여 가속되며, 자기(磁氣)렌즈나 정전(靜電)렌즈의 장치에 의하여 집중된다.

(F) 이온빔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

이러한 공작기계의 빔(beam)은 레이저 빔의 경우에서와 같이 임펄스(impulse)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연속동작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

(G)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기계는 고장력 상태에서 자기 충격(impulse) 발생기로 발생시킨 전류에 의하여 강렬한 이온화(intense ionisation)가 일어난다. 이것은 초고속으로 판을 절단하고, 거칠게 자르며, 거친 나사 가공을 하도록 한다.

(H) 워터제트 절단기(water-jet cutting machine)

이 그룹에는 수압(water-jet)이나 수압-연마제혼합(water-abrasive jet) 절단기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전형적으로 음속의 두 배에서 세 배에 이르는 속도로 물이나 미세한 연마제와 혼합된 수류(水流)를 이용한 공정에 의해 재료를 절단하도록 고안된 기계들이다. 이 기계들은 3,000 바부터 4,000 바까지의 압력 상황에서 작동하며 다양한 재료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밀 절단을 수행할 수 있다. 워터제트 절단기는 전형적으로 연질(軟質)재료[발포물·연질 고무·개스킷(gasket) 재료·박(箔 : foil) 등]에 사용한다. 워터-연마제 제트 혼합절단기는 전형적으로 경질(硬質)재료[공구용 강(鋼)·경질고무·복합물·돌·유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 등]에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청정용의 초음파 기기(제8479호)
- (b) 뿔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515호)
- (c) 시험용 기계(제9024호)

84.57 -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8457.2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457.3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이 호는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단일가공물(single workpiece)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가공작업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과 터닝센터는 제외한다)에만 한정하여 적용한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 (a)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magazine)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 (b)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닛 헤드(unit head)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나 연속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의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
- (c) 가공물을 서로 다른 유닛 헤드(unit head)로 자동 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A)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는 단일체의 기계이다. 즉, 이들 공작기계의 모든 작업은 단일기계(다기능)에서 수행한다. 이들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이들 기계는 여러 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매거진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단일의 공구나 수개의 공구를 사용해서 동시나 연속가공을 하는 **한 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예: 다축 밀링머신이나 다축절단(multiple-cutter) 밀링머신]은 **제8459호부터 제8461호까지**에 분류한다.

공구의 자동교환을 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구가 자동적으로 교환되지 않는 다기능기계[예: 드릴(drill) · 보르(bore) · 탭(tap) · 밀(mill)용의 기계]가 해당하는 호에서는 제외한다. 이러한 기계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서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8459호부터 제8461호까지**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 기계는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으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기계에서 가공물은 서로 다른 유닛 헤드(unit head)에 자동적으로 이송된다(아래 (C) 부분 참조).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는 또한 팻릿(pallet) 교환기 · 팻릿(pallet) 매거진 장치나 툴 매거진 교환기와 같은 보조장치도 포함한다.

(B)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 스테이션(single station)]은 가공물을 고정 장치에 고정시켜 놓고 유닛 헤드(unit head)가 그 가공물에 움직여 줌으로써 작업이나 기계작동이 수행되도록 하는 다기능 기계이다.

유닛 헤드(unit head)는 호환성 공구를 장착시켜서 잡아주거나, 안내하거나, 작동(회전시키고, 앞으로 쏙 내밀고, 쏙 들어가게 하는)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기계의 부분품이다. 회전형의 헤드는 보통 전동기가 결합되며, 평행이동형의 헤드는 보통 유압 실린더(cylinder)가 결합된다. 이들 헤드의 두 가지 형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그룹에는 둘 이상의 유닛 헤드(unit head)의 용도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 스테이션(single station)]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수 개의 유닛 헤드(unit head)의 용도를 가지고 단 한 가지의 기계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나 단하나의 유닛 헤드(unit head)의 용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기계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C)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이 그룹의 기계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첫째는 여러 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둘째는 공구에 가공물이 자동적으로 이송됨에 따라서 가공을 하여야 하며, 셋째는 여러 가지의 유닛 헤드(unit head)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회전형 트랜스퍼머신(rotary transfer machine)과 선형(線型) 트랜스퍼머신(linear transfer machine)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회전형 트랜스퍼머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유닛 헤드가 공통 베이스에 둥그런 원 주위를 돌면서 각 스테이션에서는 해당 유닛 헤드의 공구에 의하여 가공이 된다[예: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태핑(tapping)]. 선형(線型) 트랜스퍼머신에 있어서는 유닛 헤드가 공통 베이스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고, 가공물이 선을 따라 하나의 헤드에서 다른 헤드로 옮겨가면서 가공물에 연속적으로 가공을 한다.

이 류의 주 제4호다목에 의하여 이 호에는 가공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되는 여러 가지 기계로 구성되는 트랜스퍼 라인(transfer line)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이 류의 주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일반적으로 수치제어식의 여러 가지 기계나 가공물을 기계에 운반이나 기계가공 후 이들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리프팅 프레임(lifting frame)·컨베이어·무인트롤리·조종기와 산업용 로봇과 같은 자동하역 시설과 함께 여러 가지 기계그룹으로 구성되는 “유연 생산체계(flexible manufacturing system)”(FMS)도 **제외한다**. FMS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계 그룹과 하역 시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여러 가지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 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것]와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 (b)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제8458호)
- (c) 웨이타입(way-type) 유닛 헤드 머신(unit head machine)(제8459호)
- (d) 제8468호와 제8515호의 땀질용이나 용접용 기기

84.58 -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수평 선반

8458.11 -- 수치제어식

8458.19 -- 기타

- 그 밖의 선반

8458.91 -- 수치제어식

8458.99 -- 기타

이 호의 선반(lathe)과 터닝센터(turning centre)는 금속을 절삭이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을 표면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이다.

이러한 기계는 **제8467호**의 수치식 가공용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모터(motor)를 갖춘 것]와는 구별한다. 실제로 이들은 보통 바닥·작업대·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 플레이트·장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선반(lathe)** : 자동식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라이드 선반·수직(vertical) 선반·캡스턴(capstan) 선반·터릿(turret) 선반·프로덕션(또는 copying) 선반을 포함한다. 그러나 금속을 변형시키는 기능을 가진 스피닝 선반(spinning lathe)은 **제8463호**에 분류한다.
- (2) **스핀들 터닝선반(spindle turning machine)이나 축선반(axle turning machine)** : 대형의 휠 등의 축의 양끝을 동시에나 대칭적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 (3) **터닝센터(turning centre)** : 금속제거 가공용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선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 (a) 여러 가지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것] ;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 (b) 금속 가공용의 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re), 유닛 콘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과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 (c) 절단기계(cutting-off machine)(**제8461호**)
- (d) 압축공기식·유압식·전기식이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치식 공구(**제8467호**)
- (e) 시험기용 **제9024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458.11호와 제8458.91호

수치제어식 공작기계(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tool)는 약어로서 CNC(컴퓨터수치제어 : Computer Numerical Control)나 NC(수치제어 : Numerical Control)로 알려진 그룹이 있다. “컴퓨터수치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와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는 동의어로 간주한다. 수치제어공작기계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작기계·공구나 가공물의 기능과 이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래밍은 일반적으로 NC특수언어(예: ISO-code)로 실행한다. 프로그램과 그 밖의 자료들은 직접적으로나 연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장한다. 수치제어식 공작기계에는 공작기계·공구나 가공물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항상 제어유닛(control unit)[유닛 하나만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separate “stand alone unit”) 기계와 함께 일체로 되어 있는(built in) 경우도 있다]가 집적되어 있으며 서보(servo)시스템과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 CNC기계·CNC선반·NC밀링(milling)기계는 수치제어식 공작기계의 사례이다.

만일 제어유닛(control unit)이 공작기계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작기계가 이러한 기계형의 특성을 갖는 **한은** 역시 수치제어식의 공작기계로 간주한다.

84.59 -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공 · 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21 -- 수치제어식

8459.29 -- 기타

-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 -- 수치제어식

8459.39 -- 기타

-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8459.41 -- 수치제어식

8459.49 -- 기타

-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51 -- 수치제어식

8459.59 -- 기타

-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 -- 수치제어식

8459.69 -- 기타

8459.70 -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이 호에는 금속을 절삭가공하는 것으로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공(threading) · 태핑(tapping)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제8458호의 선반(lathe)과 터닝센터(turning centre)는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 · 벤치 · 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 · 장착용 프레임 · 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수공구(hand tool)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tools for working in the hand)와 구별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 이들 기계는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공(threading) · 태핑(tapping)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어 있고, 부착된 기관이 없다. 이들은 모터(motor)와 툴홀더(tool holder)를 붙잡아 주는 프레임(frame)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가이드(way)가 갖추어져 있어서 적절한 기관(base) 위에 장치되면 전후로 반복해서 움직일 수 있다. 가공물은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과는 별도로 작업 홀더에 삽입되며,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등을 하기 위하여 전후 수평으로 움직인다.

- (2)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 이러한 기계는 드릴(drill)이나 비트(bit)로 불리는 회전 공구에 의하여 제품 속에 원통형의 구멍을 절삭하는데 사용하며, 오목하게 구멍을 파는 것을 포함한다. 작업 중에는 제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해놓고 공구를 회전시키거나(절삭동작) 작업을 공급하도록 한다(공급동작). 이 호에는 또한 제품을 회전시키면서 작업을 하도록 공구를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드릴링 머신(drilling machine)도 포함하며 두 가지 공정을 모두 사용하는 유사한 기계도 포함한다.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은 방사(放射 : radial)형이나 그 밖의 형의 간단한 스피들(spindle) 머신과 수 개의 스피들을 갖춘 기계를 포함한다[멀티-스피들(multi-spindle) 드릴링 머신].

- (3) **보링머신(boring machine)** : 이러한 기계는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기존 구멍의 내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보링(boring)은 원통형·원추형이나 구(求)형의 가공이 될 수도 있다. 보링머신(boring machine)은 예를 들면, 피스톤(piston) 엔진이나 펌프의 실린더(cylinder)에 내경을 치수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가공하는데 사용한다.

보링(boring)의 작업은 치수가 고정된 공구(송곳 드릴·직선이나 나선형으로 홈을 파서 완성하는 송곳)나 가변 치수의 공구(끝이 퍼지는 송곳·스트립 삽입 송곳·미동조절 가능한 보링헤드(boring head)·인셋 커터(inset cutter)를 갖춘 보링헤드(boring head)나 유도로를 따라 가공하는 공구[조절이 가능한 것·확장이나 비조절 커터·중공(中空) 일체 슬리브(sleeve)나 삽입부분을 갖춘 슬리브(sleeve)]를 사용하여 그 정면을 완성 가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수직형(vertical) 보링머신·수평형(horizontal) 보링머신(고정되거나 이동성의 부착구를 갖춘 것)·복합형(multiple) 보링머신·독자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두 개의 동심 스피들로 만든 복합 스피들을 부착한 보통 밀러-보러(miller-borer)로 알려진 머신은 물론 중공(中空)으로 된 샤프트(shaft)의 내부를 복제하기 위한 보링머신을 포함하며 ; 내부 스피들은 보링 바(boring bar)(스피들 보러)의 부착물인 긴 슬리브(sleeve)로 구성되며, 외부 스피들은 일반적으로 강직한 방법으로 판에 연결되어 있고 밀링커터(밀링스피들 : milling spindle)를 부착하기 위하여 응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비록 그 밖의 부수적인 작업[예: 드릴링(drilling)·표면가공(surfacing)·밀링(milling)·터닝(turning)과 때로는 스크루 커팅(screw cutting)]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일지라도 주로 보링(boring)용으로 제작한 보링머신도 포함한다. 반면에 보조적이나 부가적 작업으로서 보링(boring)을 수행하는 선반과 터닝센터는 제8458호에 분류한다.

- (4)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이러한 기계는 회전식공구[밀링 커터(milling cutter)라고 한다]에 의하여 평면이나 윤곽을 가공하는 것이며, 원형 커팅 무브먼트는 머신테이블에 고착된 물품의 트레이싱 무브먼트(traversing movement)와 결합되어 있다. 밀링 머신은 특히 수평밀링 머신·수직밀링 머신·수평-수직밀링 머신·조절 가능한 헤드를 갖춘 밀링 머신·플레인-밀링 머신·보통의 밀링가공 이외에 기계에 장착된 분할대(dividing head)에 의하여 가공할 수 있는 만능밀링 머신·샤프트나 스퍼어(spur)기어나 헬리컬(helical) 기어 상의 밀 스플라인(spline)·반복형의 밀링 머신·그루빙(grooving)이나 챔퍼링(chamfering)용의 밀링 머신·조각용 밀러(miller)를 포함한다.

- (5) **태핑머신(tapping machine)**(즉, 기존의 구멍에 나사의 날을 세우는 기계)과 볼트·스크루 등의 날을 파는 **나선가공기계(threading machine)** : **나선밀링머신(thread milling machine)**은 밀링머신으로 간주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여러 가지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것] ;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 (b)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 (c) 금속의 절삭가공용 선반(lathe)과 터닝센터(turning centre)(제8458호)
- (d) 제8461호의 플레이닝(planing)용 공작기계와 금속의 절삭가공용 공작기계
- (e) 압축공기식·유압식·전기식이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가공용의 공구(제8467호)
- (f) 검사용의 기기(제9024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459.21호·제8459.31호·제8459.41호·제8459.51호와 제8459.61호

소호 제8458.11호와 제8458.91호에 대한 해설을 참조할 것

소호 제8459.51호와 제8459.59호

이들 소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은 유도로(guideway)에 의하여 스탠드 위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수평장치로 구성되는 콘솔(console)이 있다는 점에서 식별될 수 있다. 이 스탠드는 횡 방향으로 작동되는 작업테이블을 지지해 주고, 콘솔에는 보통 기계구동에 필요한 장치가 들어 있다.

84.60 - 디버링(deburring) · 샤프닝(sharpening) · 그라인딩(grinding) · 호닝(honing) · 래핑(lapping) · 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 평면 연삭기

8460.12 -- 수치제어식

8460.19 -- 기타

- 그 밖의 연삭기

8460.22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460.23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460.24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460.29 -- 기타

-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 수치제어식

8460.39 -- 기타

8460.4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8460.90 - 기타

이 호에는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표면완성 가공기계(surface-finishing machine)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제8461호)**. 이러한 기계는 연마석 · 연마재 · 연마물품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이다. 이 호에서 “광택재(polishing products)”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1) 금속탄화물 · 강(鋼) · 연질(軟質) 금속 · 목재 · 펠트 · 방직용 섬유재료 · 가죽으로 만든 폴리싱(polishing) 디스크 ;
- (2) 와이어 브러시 ;
- (3) 폴리싱(polishing) 패드

일반적으로 가공 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 · 벤치 · 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 · 장착용 프레임 · 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수공구(hand tool)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tools for working in the hand)와 구별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디버링(deburring)용 기계** : 금속으로 만든 브러시나 연마재료를 갖춘 것으로서 거친 주조품이나 절단금속의 가장자리의 거친 부분을 트리밍(trimming)하는데 사용한다.
- (2) **샤프닝 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연삭기이나 커터(cutter)연삭기] : 카드 샤프닝 머신(card sharpening machine)은 물론 서멧(cermet)이나 중금속으로 만든 공구 팁(tool tip)의 그라인딩(grinding)용 기계를 포함한다.

(3) **그라인딩머신(grinding machine)** : 여러 가지 형의 그라인딩 머신[예: 내면(internal surface) 그라인더 · 무심(centreless) 표면(surface) 그라인더 · 표면 그라인딩 머신(grinding machine) · 나선(thread) 그라인딩 머신 · 밸브와 밸브 시트(valve and valve seat) 그라인딩(grinding)용 머신]으로서, 그 기능은 요구되는 정밀도로 다른 기계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예를 들어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i) **무심연삭기(centreless grinding machine)**. 이 기계는 스피들이 없다는 점과 그라인딩 휠 2개(마찰 휠 1개와 조절 휠 1개)와 작업대상을 붙잡아주는 지지 블레이드(support blade) 1개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ii) **원통연삭기(cylindrical grinding machine)**. 이 기계는 스피들 1개와 작업대상물을 붙잡고 이동하여 주는 지지대 1개, 그리고 하나 이상의 마찰 휠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기계는 작업대상물의 외부 표면이나 내부 표면에 작업을 하거나 또는 외부와 내부 표면 모두에 작업을 할 수 있다(만능 원통연삭기).

(4) **호닝머신(honing machine) · 래핑머신(lapping machine)** : 정밀하게 맞춘 표면을 완성 가공하는데 사용한다.

(5) **폴리싱머신(polishing machine)** : 가공물의 표면을 완성 가공하는데 사용한다.

(6) **제8459호나 제8461호의 것을 제외한 조각용 머신(engraving machine)**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수공구(handtool)와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제8205호)

(b) 모래 분사기(제8424호)

(c) 여러 가지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 광자빔 · 초음파 · 방전 · 전기화학 · 전자빔 · 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것) ; 워터젯 절단기(제8456호)

(d)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과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e) 압축공기식 · 유압식 ·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식 공구(제8467호)

(f) 금속제품의 모래 제거 · 스케일 제거나 연마용의 회전드럼(제8479호)

(g) 검사용 기기(제9024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460.12호 · 제8460.22호 · 제8460.23호 · 제8460.24호와 제8460.31호

“수치제어식(numerically controlled)”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소호 제8458.11호와 제8458.91호에 대한 해설을 참조할 것

84.61 - 플레이닝(planing)용 · 셰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461.3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461.40 -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8461.50 - 톱기계나 절단기

8461.90 - 기타

이 호에는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하며,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거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 · 벤치 · 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 · 장착용 프레임 · 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 수공구 및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 : 단순한 절단 날을 갖춘 공구를 가지고 물품의 외부 평면이나 단면을 가공하는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그 속에 공구가 고정되어 있고 평삭(平削)되어지는 물품을 붙잡는 테이블이 평삭(平削)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트 플레이닝 머신(pit planing machine)이나 플레이트 에지 플레이너(plate edge planer)와 같은 어떤 대형의 플레이닝 머신은 고정 테이블을 갖고 아주 긴 물품의 가공에 사용한다 (예: 레일).

어떤 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은 한 두 개의 보조적이거나 부가적인 밀링머신(milling machine) 캐리지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동일 수량의 플레이닝(planing) 캐리지로 대체한 것이다. 소위 “플레이닝과 밀링 머신(planing and milling machine)”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작기계가 비록 밀링(milling) 작업용으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 테이블의 속도를 감속함으로써 밀링작업이 가능할지라도 플레이닝 머신으로 간주한다. 이것들은 **제8459호**의 “플레이노 밀링머신(plano-milling machine)”이라고 하는 밀링머신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의 외모는 플레이닝 머신의 것과 유사하지만, 단지 밀링캐리지가 갖추어져 있을 뿐이다.

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은 또한 플레이닝 캐리지 외에 한 두 개의 그라인딩 슬라이드(grinding slide)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그라인딩 헤드의 추가로 이들 플레이닝 머신(planing machine)이 테이블 표면 투루잉머신(trueing machine)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형의 것은 플레이닝 캐리지 · 밀링 캐리지와 그라인딩 슬라이드가 하나나 동시에 다 갖추어져 있으나, 그 밖의 것은 슬로팅(slotting)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 (2)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 : 플레이닝(planing)의 원리로 작동하는 공작기계로 가공되어지는 물품이 절단가공 중에 고정한다는 사실로 보아 플레이닝 머신(planing machine)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구는 반복적인 선형 운동을 하는 것이다. 톱홀더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최대 작업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셰이핑 머신은 보통 아주 적은 치수의 물품을 가공하는데 국한한다.

- (3)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 플레이닝(planing)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공작기계로서 그 기계 속에서 가공되는 물품이 절단가공 중에는 고정된 상태이며, 공구가 수직이나 때로는 경사진 방향으로 반복해서 선(線)운동을 하게 된다. 이들 기계는 용도에 따라서 기계가 짧은 슬라이드 스트로크(slide stroke)로 특수화된 슬로팅 툴(slotting tool)이 있고 ; 아주 두꺼운 물품으로부터 상당량의 물질을 급속히 절삭해내는데 필요한 가공을 수행하는 슬로팅-펀칭머신(slotting-punching machine)이 있다. 이들 기계는 슬라이드 툴(단순 절단날을 갖춘 것)이나 펀칭 툴(4개의 절단 날을 갖춘 것)의 두 가지를 사용하며 ; 수직형 슬로팅머신 ; 횡단식 변위 슬라이드를 갖춘 슬로팅머신 ; “홈파는 기계(grooving machine)”(잡아당기거나 미는 것에 의하여)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 그 가공 공정은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의 것과 유사하나 그 차이는 사용하는 공구에 있다.
- (4)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 표면 가공이나 성형하기 위하여 가공물을 횡단하거나 구멍을 통과하여 공구(브로치)를 당기거나 미는 것이다.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의 여러 가지 형 중에는 단순 슬라이드를 갖춘 수평형이나 수직형의 기계가 있으며 ; 하나의 브로치나 브로칭프레스(broaching press) 위에서 각각 가공하는 두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는 이중 기계[“복식(duplex)”]가 있으며 브로칭프레스(broaching press)는 압력에 의하여 브로치 위에서 가공하는 수직형 기계이다.
- (5)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 이 호에는 원통형이나 원추형의 소재로부터 급속의 절삭에 의하여 전적으로 기어를 제조하기 위해 제작된 기어 절삭기를 포함한다.
기어절삭기는 원칙적으로 다음 공정에 의하여 가공을 한다
- 모듈 제어된 밀링(milling)-커팅(cutting) 공정으로 그 속에는 밀링(milling) 디스크나 원추형의 커터(cutter)가 공구로 사용한다. 이 공정은 일반적으로 스퍼어(spur) 기어 커팅용으로 사용하며 ;
 - 재생커팅 공정으로 그 속에서 기어 치(teeth)는 플레이닝 툴(planing tool)(직선 절단공구)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공정은 베벨(bevel) 기어커팅과 원통 기어커팅을 하기 위한 것이며 ;
 - 웜 호브(worm hob) · 랙커팅(rack cutting) 툴[체이싱(chasing) 툴]이나 피니언 툴(원형 절단기용)과 같은 공구를 맞물리거나 사용하여 커팅하는 공정. 이 공정은 내부나 외부로 직선이나 나선형과 원추형의 기어로 가공되어 지도록 하는 것이고 ;
 - 연마커팅 공정
- (6) **톱기계(sawing machine)** : 사용하는 공구의 형태에 의하면 이러한 형의 기계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 왕복식(reciprocating) 톱기계나 진동식(oscillating) 톱기계 : 이 공구는 직선형의 톱날이 달린 날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왕복식 선(線)운동으로 작용하며 ;
 - 원형톱(circular saw) : 바깥 가장자리에 톱니가 달려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공구를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공구는 보통 “슬리팅 톱날(slitting saw blade)”이나 “슬로팅 톱날(slotting saw blade)”이라고 하며 ;
 - 밴드소(bandsaw) 톱기계 : 이것은 아주 긴 날을 사용한 것이며 한쪽은 톱날이 있고 날의 끝은 밴드가 형성되도록 결합되어 있다.
- (7) **절단기계(cutting-off machine)** : 이들 공작기계(machine-tool)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구 때문에 톱기계와는 전혀 다르다. 이 기계의 공구는 선반공구와 비슷해서 절단공구일 수 있고 연마재나 급속디스크일 수도 있다.
- 두 가지 방법을 다 응용한 절단 공구를 갖춘 절단기계
한 가지 형은 슬라이드 선반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이나, 슬라이드 선반의 받침대와 달리 툴홀더(tool holder)가 세로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이들과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형은 축 선반과 똑같이 가공하는 것으로 그 속에 있는 공구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서 가공되어지는 물품이 캐리지(carriage)로 움직인다. 그렇지만, 가공되어지는 물품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후자와는 구별할 수 있다.

위의 형태 두 가지 모두 하나의 절단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다.

슬라이드 선반과 똑같이 가공을 하는 것은 직경이 큰 중공(中空) 로터리 브로치로 구성되고 물품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가공을 한다. 아주 짧은 밀받침이 한 개나 두 개의 툴 홀더를 받쳐주며, 이 툴 홀더는 가로로 움직일 수 있다. 축 선반과 똑같이 가공하는 것에 있어서 절단되어지는 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캐리지(carriage)에 고정한다. 공구 그 자체는 기계에 고착되어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크라운(crown)으로 구성되며 그 위에 절단 공구가 둥그런 링(ring) 모양으로 배열한다.

- 연마디스크를 갖춘 절단기계는 둥근 톱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슬리팅(slitting) 톱날을 쌍날이 달린 연마휠(double-edged abrasive wheel)로 대체되어진 것이다.
- 금속디스크를 갖춘 절단기는 또한 마찰 소잉 머신(friction sawing machine)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위에 치(teeth)가 없는 연강(煉鋼) 디스크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는 사실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크는 홈이 파져 있을 수도 있으며, 디스크에 주변 속도를 주는 방법으로 회전시킨다. 이렇게 하여 디스크의 주위를 금속 조각에 점차로 접근시켜 주면, 그 금속 조각은 디스크와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고 즉시 녹는다. 이러한 현상은 디스크와 절단되려는 금속 사이에 갇혀진 공기의 산화작용을 겸한 마찰의 결과이다.

(8) **줄기계(filing machine)** : 왕복형 톱기계와 유사하게 제작한 것이나 블레이드(blade)보다는 줄(file)을 사용한다.

(9) **조각기계(engraving machine)**(제8459호나 제8460호의 것은 제외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수공구(hand tool)(제8205호)
- (b) 여러 가지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것] ;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 (c)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과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 (d)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직식 공구(제8467호)
- (e) 검사용 기기(제9024호)

**84.62 -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 형(型)단조용(압연기는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펀칭용
· 낫칭(notching)용 · 니블링(nibbling)용[드로우벤치(draw-benches)를 제외
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 · 슬리팅(slitting) 설비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
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 단조용 · 형 단조용 열간 성형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열간 해머

8462.11 -- 밀폐식 형 단조기

8462.19 -- 기타

- 평판제품용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를 포함
한다]

8462.22 -- 프로파일 성형기

8462.23 --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

8462.24 --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8462.25 --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8462.26 --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

8462.29 -- 기타

-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 ·
그 밖의 전단기(프레스를 제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8462.32 -- 슬리팅(slitting) 설비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

8462.33 -- 수치제어식 전단기

8462.39 -- 기타

- 평판제품용 펀칭기 · 낫칭기(notching machine) · 니블링기(nibbling machine)(프레스
를 제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2 -- 수치제어식

8462.49 -- 기타

- 관 · 파이프 · 중공(中空)이 있는 형강 · 봉(bar) 가공용의 기계(프레스를 제외한다)

8462.51 -- 수치제어식

8462.59 -- 기타

- 냉간 금속가공용 프레스

8462.61 -- 액압식 프레스

8462.62 -- 기계식 프레스

8462.63 -- 서보프레스

8462.69 -- 기타

8462.90 -- 기타

이 호에는 금속이나 금속 탄화물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벤치·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 수공구(hand tool)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단조용·형(型)단조용 열간 성형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열간 해머. 대체로 단조(forging)는 퍼들링 슬래그(puddling slag)를 제거하기 위해서나[싱글링(shingling)] 금속을 성형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압력을 가해 가열된 금속을 가공하는 모든 공정을 포함한다. 금속이 볼(ball) 모양으로 가공되는 싱글링(shingling)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성형되는 금속은 불룸(bloom), 빌릿(billet)이나 시트 바(sheet bar)와 같은 반가공품 모양이거나 봉 모양이며, 일반적으로 단면이 둥글다.

형(型)단조 공정에서는, 작업대상물이 완전히 형(型)에 끼워지게 된다.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는 아직 작업하지 않은 대상물의 단지 일부분에만 작용하는 단일 금속 형(型)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을 개방식(開放式) 형(型)단조(open-die forging)라고 부른다.

형(型)절단기로 형(型)단조 공정 중에 만들어지는 "플래시(flash)"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손질작업은 특별한 절단용 형(cutting dies)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작업대상물에 필요로 하는 정밀한 치수(dimensions)를 만들어내기 위한 마무리공정은 정밀다이(precision dies)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은 "사이징(sizing)"이나 "보정(calibrating)"이라고 표현한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공작기계의 예이다.

(a) 밀폐식 형 단조기(closed die forging machine) :

밀폐식 형(型)단조는 형(dies)이 서로를 향해 움직여서 작업 대상물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덮는 공정이다. 가열된 원재료는 보통 톱질하거나 잘라낸 둥그스런 모양이거나 사각형의 빌릿 모양이며 하형(下型 : bottom die)에 놓여진다. 단조의 형상이 상형(上型 : top die)이나 하형에 음각 이미지(negative image)로 합체된다. 원재료에 대한 상형의 충격은 위에서 내려 오면서 원재료를 요구되는 단조 형상으로 형성하게 된다.

(b) 개방식 형 단조기(open die forging machine) :

개방식 형(型)단조는 금속 조각을 해머(hammer)나 램(ram)과 단일의 개방 형(single open die) 사이에서 변형시키는 공정이며, 최종의 형상이 달성될 때까지 여러 단계의 성형 과정을 거친다.

(c) 해머, 낙하(落下) 단조 장치(drop forging)와 드롭해머(drop hammer)(기계식·액압식이나 공기작동식 해머와 증기식 해머) : 연이은 짧고 날카로운 충격으로 작동한다.

(d) 금속 가공 프레스 : 연속적인 압력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금속 가공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범용(汎用) 프레스는 제외한다(제8479호).

2. 평판 제품용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프레스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이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a) **프로파일 성형기(profile forming machine)** : 평판제품으로부터 금속 프로파일(metal profiles)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이다. 평평한 금속 시트는 연속적인 스탠드 위에 장착된 여러 개의 롤러 세트(roller sets)를 통과하게 된다. 평평한 시트는 요구되는 단면 프로파일(section profile)을 얻을 때까지 각 롤러 시스템에 의해 점차적으로 서로 겹치게 접혀진다. 프로파일 성형기는 금속 시트의 겹쳐진 횡단면을 변형하는 반면 세로 축은 선형(linear)을 유지하게 된다.
- (b) **평판제품용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numerically controlled press brake)** : 금속 시트와 판을 자동화되고 프로그램화된 방법으로 굽히기 위한 기계이다. 전형적으로, 두 개의 C-프레임(C-frames)이 프레스 브레이크의 측면을 형성하며, 하부에 있는 테이블과 상부에 있는 이동가능한 빔(beam)에 접속되어 있다. 하부의 도구는 테이블에 장착되어 있고 상부의 도구는 그 보다 윗쪽에 있는 빔에 장착되어 있다. 시트는 프레스 빔(press beam)을 제어하여 낮춤으로써 구부러진다. 평평한 시트는 V자 형(V die)에 있는 상층부 도구에 의해 하층부 도구 안으로 압착되고 이에 따라 일직선으로 형이 변형된다.
- (c) **평판제품용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numerically controlled panel bender)** : 평평한 금속 시트를 냉간 성형하는 기계이며, 자동화되고 프로그램화된 방법으로 블랭크(blank)로부터 금속 제품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패널 굽힘기는 개념상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와 다소 비슷한 기계이지만, 금속의 시트로부터 제품을 대량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동화(automation)의 수준이 높다. 이것들은 금속 시트를 움직일 필요없이 두 방향으로 접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대상 물품을 뒤집어야만 하는 프레스 브레이크에서는 불가능하다.
- (d) **평판제품용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numerically controlled roll forming machine)** : 자동화되고 프로그램화된 방법으로 금속 시트나 판의 세로 축의 요구되는 경로[호(弧), 원, 타원]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금속 시트나 판을 세 개 이상의 롤(roll)의 세트 사이로 통과시킨다. 롤 성형기(roll forming machine)는 금속 시트의 세로 축의 굴곡(curvature)을 변경시키지만 횡단면은 변경되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된다. 롤 성형기는 제품을 롤러 시스템(roller system)을 통과시키면서 요구되는 프로파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금속 구조의 변경은 금속의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접음의 결과로 인해 부분적으로 변형된 곳에만 발생하게 된다.
- (e) **접음기(folding machine)** : 평판제품의 접기 작업은 금속을 파열시키지 않으면서 직선 형태로 된 시트(또는 스트립)에 작은 반경의 영구적인 변형을 주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작업은 만능 접음기(universal folding machine)에서 수행되거나, 접음용 프레스(folding press)에서 수행된다.
- (f) **교정기(straightening machine)와 펼침기(flattening machine)** : 제조 후 이들의 조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평판제품(예: 시트나 스트립)의 결함(缺陷)을 교정하는 기계이다. 예를 들어, 롤러형의 펼침기(flattening machine of roller type)는 일련의 평행롤러[또는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되는데, 평행롤러 수는 적지만(5개~11개) 비교적 직경이 크고 견고성이 큰 것도 있고, 평행롤러 수는 많지만(보통 15개~23개) 직경이 작고 신축성이 크며 같은 숫자의 카운터 롤러(counter roller)로 지지되는 것도 있다.

3. 평판제품용 슬리팅 설비 · 일정 길이 절단용 설비 · 그 밖의 전단기(프레스를 제외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 이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a)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는 두 개의 실린더 모양의 롤(rolls)을 리브(ribs)와 그루브(grooves)에 일치시켜 커다란 금속의 롤을 절단함으로써 여러 개의 폭이 더 작은 롤(rolls)과 모서리를 절단한 롤(rolls)로 만드는 가공 설비이다. 슬리팅 라인의 기본 부분품은 코일 풀기용 기계, 코일 편평기, 슬리터(slitter)와 코일 감기용 기계이다. 재료가 코일 풀기용 기계에서 공급되고, 우선 편평하게 만들어지며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절단 휠(하나씩은 꼭대기에 또 하나는 아래쪽에 위치한다) 사이로 낚(nip)을 통하여 다시 공급된다. 그 후에 세로로 절단된 작업대상물(slit pieces)이 설비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양한 코일 감기용 기계로 집어 올려진다.
- (b) 평판제품용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길고 편평한 압연된 금속이나 코일 모양의 금속을 절단함으로써 여러 개의 시트로 만드는 가공설비이다. 일정 길이 절단용 설비는 세 개의 주요 부분품으로 구성되는데, 코일 풀기용 기계, 코일 편평기와 전단기(剪斷機)이다. 원료가 코일 편평기를 통해 코일 풀기용 기계에서 공급되면 전단기로 편평한 금속 시트로 절단한다.
- (c) **전단기(shearing machine)** : 전단 공정은 두 개의 절단 공구(tools)의 동일 평면에 있는 사용면들을 절단할 금속에 수직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구들은 소성변형(塑性變形 : plastic deformation)을 거치게 될 금속을 관통하고, 점차적으로 더 거세지는 압력과 투과력을 통해 그 금속의 조직을 일렬로 된 날(blades)을 따라 파단(破斷)한다.

이러한 방식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균형 전단기(balance shear), 레버 전단기(lever shear), 날(blades)을 사용하는 기요틴 전단기(guillotine shear) ; 회전식 전단 기계[날(blade) 대신에 원뿔의 디스크 모양이나 원뿔대(frustum) 모양의 도구를 사용한다]

4. 평판제품용 편칭기 · 낫칭기(notching machine) · 니블링기(nibbling machine)(프레스를 제외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이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a) **편칭기(punching machine)** : 두 개의 도구(하나가 다른 하나의 안쪽에 조정되어 있다)로 금속을 구멍을 뚫거나, 금을 내거나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이다. 편칭 도구는 편치(punch)라고 부르며 다른 하나의 도구는 다이(die)라고 부른다. 전단(shearing) 공정에서 처럼 금속을 파열하는 결과가 생기며, 얻을 수 있는 구멍의 모양은 도구의 모양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방식의 여러 기계에는 편칭으로 기어(gears)를 제조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편칭기는 프레스(press)와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편칭기는 금속 시트 조각을 절단하는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작동한다[니블링(nibbling)이라고도 부르는 공정이다]. 이에 비해서, 형(型)단조(die forging)나 형(型)절단 공정(die cutting operation)의 일부로서의 편칭에서는 금속 시트에 형(dies)을 단 한번 가함으로써 절단한다.

- (b) **낫칭기(notching machine)** : 여러 가지 형(L·T·I나 U형)과 반원형을 조립용[예: 홈(groove)·가늘고 긴 홈(slot)·장부(tenon)와 열장이음(dovetail)]으로 준비하기 위한 가공이나, 또는 단순히 절단하거나 뚫기 위한 가공에 사용하는 소형기계이다.

5. 관·파이프·중공(中空)이 있는 형강·봉(bar) 가공용의 기계(프레스를 제외한다)

이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금속의 관(tube)·파이프(pipe)·프로파일(profile)·중공(中空) 형강·봉(bar)을 가공하여 칩(chips)을 제거하지 않고 그 형상을 바꾸기 위한 **가공을 수행하는 기계**. 이러한 공정에는 관·파이프·중공(中空) 형강·봉(bar)에 대한 가공(프레스를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굽히기, 접기, 끝 마무리, 교정, 펼치기, 편칭(금속을 제거하지 않고), 관 유압성형(tube hydroforming)을 포함하며, 드로우벤치(draw bench)(제8463호)는 제외한다.

굽힘기(bending machine)는 성형 롤러(forming roller)를 사용하거나, 프레스 접음(press bending)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을 수행하며, 관(tube)(그리고, 특히, 오일 파이프)의 경우에는 중요 단면은 고정된 실린더에 유지한 채로 그들의 끝을 잡아당겨 작업을 수행한다.

접음기(folding machine)는 봉(bar·rod)·관(tube)·형강(angle·shape·section)을 성형 [위의 2 (c) 참조]과 비슷한 방법으로 접음으로써 작업을 수행한다.

선 굽힘기(wire bending machine)는 단일의 평면에 굴곡을 더해 준다. 그 보다 복잡한 공정을 수행하는 선(線) 굽힘기(예: 스프링 제조기)는 단순한 접음기로 보지 않으며 제8463호로 분류한다.

6. 냉간 금속가공용 프레스

이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a) 액압식 프레스

액압식 프레스(hydraulic press)는 고압 유체를 사용하여 피스톤으로 기계의 작동 부품을 구동함으로써 프레스의 빔(beam)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계인데, 빔에는 재료의 형상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공구나 다이(die)가 장착되어 있다.

액압식 프레스는 수치제어식일 수도 있고 수치제어식이 아닐 수도 있다. 기계식 프레스나 서보프레스와 비교하면, 액압식 프레스의 왕복운동(travel)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고 프레스 빔(press beam)의 모든 중간 위치는 기계의 운동학적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실현가능하다.

(b) 기계식 프레스

기계식 프레스(mechanical press)는 전동기를 사용하여 운동학적 사슬(kinematic chain)을 통해 압축력을 발생시키는 기계이다. 이러한 프레스는 에너지를 일차 모터에서 클러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공구로 기계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되거나 고안되어 있는데, 클러치 메커니즘에서는 토크(torque)를 전달하여 휠(wheel)에서 러너(runner)로의 움직임을 생성하게 된다. 작업대상물인 금속의 형상은 그 위에 가해지는 상당한 압력에 의해 변경되게 된다.

기계식 프레스는 수치제어식일 수도 있고 수치제어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들은 전동기를 하나 갖추고 있고 동작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클러치 기반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c) **서보프레스**

서보프레스(servo-press)는 전형적으로는 서보-모터(servo-motor)에 의해 추진되는 운동학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압축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작업대상물인 금속의 형상을 변형하는 기계이다. 이러한 프레스는 서보-드라이브(servo-drive)를 수단으로 하는 공구에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토크(torque)을 발생시켜 그 장치에 동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클러치 메커니즘은 갖추지 않고 있다.

서보프레스는 기계식 프레스(보통 나사 구동식이다)의 특수한 형태이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동작에 대한 관리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즉, 서보프레스에서는 동작이 서보-드라이브(servo-drive)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반면, 특징의 다른 기계식 프레스에서는 동작이 기계적 하드웨어의 설정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프레스 빔(press beam)의 왕복운동(travel)에 대한 조절 측면에서 (유연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d) 봉(bar·rod)·형강(angle·shape·section)·관(tube) 등을 압출(押出)하기 위한 **압출(押出) 프레스(extruding press)**. 이러한 프레스는 금속의 덩어리를 펀치를 사용하여 압출 다이(extrusion die)를 통해 밀어넣도록 설계되어 있다.

(e) **금속 스크랩을 베일(bale)로 압축하기 위한 프레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 (a) 수공구(hand tool)(제8205호)
- (b) 압연기(제8455호)
- (c)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과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 (d)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직식 공구(제8467호)
- (e) 주소판 스탬핑(stamping)용 기계(제8472호)
- (f) 선철 파괴기와 주철스크랩(cast iron scrap)을 파괴하는 특수 스탬핑(stamping)용의 밀(mill)(제8479호)
- (g) 반도체 리드(lead)를 굽힘·접음·교정하는 공작기계(제8486호)
- (h) 시험용 기기(제9024호)

84.63 -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 8463.1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63.20 - 나사 전조기
- 8463.30 - 선 가공기
- 8463.90 - 기타

제8462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재료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거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벤치·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인발기(drawing machine)**[드로오벤치(draw bench)] : 봉(bar)·관(管 : tube)·형재(形材 : shape)·선(wire)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잡아늘이는데 사용한다.
- (2) **나사 전조기(thread rolling machine)** : 절삭가공하지 않고 롤링과 프레싱에 의하여 볼트나 스크루에 나사날을 세우는 기계이다.
- (3) **선(線) 가공기**[예: 스프링·유자선·체인·핀·쇠못(wire-nail)나 스테이플·훅(hook)과 같은 선(線)제품을 제조하는 것] : 금속망 제조용으로 특수 설계된 종류의 기계(그 조작방법과 구성부분이 보통의 방직용 섬유직기의 직기와 서로 다른 것으로 한정한다)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사전에 클림프된 선(prechrimped wire)를 사용하는 직기는 **제외한다(제8479호 등)**.
로프제조기이나 금속선으로 만든 연선(撚絲)이나 방직용 섬유와 금속선을 혼합한 연선의 제조기는 **제외한다(제8479호)**.
- (4) 전구용 필라멘트 제조용의 **미세한 금속선(metal wire)을 나선 모양으로 감는 기계**
- (5) **제8462호**의 프레스 이외의 **리베팅 머신**
- (6) **스웨이징머신(swaging machine)** : 관(管 : tube)이나 봉(bar)의 직경을 작게 하기 위하여 회전다이스를 통하여 강압시키는 것이다.
- (7) **스피닝선반(spinning lathe)** : 이들 기계는 금속을 변형시킴으로써 작동하는 사실 때문에 **제8458호**의 기계와는 다르다.
- (8) **나선모양 금속스트립으로 된 플렉시블 관(flexible tube)을 제조하는 기계**
- (9) **전자(電磁)식 펄스 금속성형기(metal-forming machine)**[자기성형기(magneto-forming machine)] : 금속가공물으로써, 보통 관형(管形)을 다이의 조력과 함께 재료를 절삭하지 않고 성형하기 위하여 자속(磁速)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수공구(hand tool)(제8205호)
- (b) 베일(bale)용의 밴딩머신(banding machine)과 캔(can)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기(封緘機)(제8422호)
- (c)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과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 (d)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식 공구(제8467호)
- (e) 시험용기기(제9024호)

84.64 -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

8464.10 - 톱기계

8464.20 - 연마기나 광택기

8464.90 - 기타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의 기계는 보통 상(床 : floor)·벤치(bench)·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한다.

(I)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

이 그룹에는 천연석의 가공기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질(硬質) 재료(도자기·콘크리트·인조석·석면시멘트 등)의 가공기계도 포함한다. 귀석이나 반귀석의 가공기계의 대부분은 특징[고(高)정밀도 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톱기계(sawing machine)나 절단기 :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톱기계[원형톱·대(帶)형톱과 왕복식톱·무치(無齒 : toothles)식의 블레이드(blade)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2) 디스크(예: 연마재료) 절단기 : 콘크리트의 표면이나 건축석의 표면 위에 임시로 조인트(joint)의 홈을 파거나 절단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 (3) 나선형선(helical-wire) 절단기 : 수 개의 나선상으로 꼰 끈으로 되어 있는 엔드리스 강선(endless steel wire)에 의하여 조작되어 홈이 파진 풀리(pulley)에 의하여 유도되는 것이다. 사암(砂巖)의 가루와 물의 혼합물인 연마재의 도움을 받아서 앞에서 설명된 선이 마찰에 의하여 석을 절단해준다.

(B) 열단(裂斷 : splitting or cleaving)기계

(C) 그라인딩(grinding)용·스무딩(smoothing)용·폴리싱(polishing)용·그레인(graining)용 등의 기계

(D)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E) 선삭용(旋削用 : turning)·조각용(engraving·carving)·형(型)절단용 등의 기계

(F)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절단기나 완성가공기

(G) 도자기제품의 가공[드릴링(drilling)·절단·밀링(milling)·연마 등]용 기계 : 다만, 세라믹 페이스트나 소성(燒成)되지 않은 요업재료제품의 가공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예: 세라믹 페이스트의 형입기와 성형기(成形機)는 제8474호에 분류한다).

(II)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

이 범주에는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유리의 열간(熱間) 가공기계(즉, 액체상태나 가소성 상태로 될 때까지 가열되는 유리 가공기계)는 **제외한다(제847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리가 어떤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가열되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질(硬質) 재료로서의 경도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유리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계도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계의 대부분은 석재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하여 앞 (I)에 열거한 기계와 유사한 작업을 진행한다.

다른 한편 그 밖의 기계는 보다 특수한 가공, 예를 들면, 장식완성품 가공이나 어떤 특수 용도(예: 광택용이나 시계제조용)용으로 사용한다. 특히 다음에 열거한 물품은 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 (1) **유리 절단기**[휠(wheel)형의 것이나 다이아몬드형의 것]
- (2) **유리 절단(성형)기**[다면체용이나 커트글라스(cut-glass)용의 것]
- (3) **트루잉머신(trueing machine)과 연마기 등** : 주로 끝(端 : edge)을 매끄럽게 하거나 저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주(鑄)입된 물품의 가장자리를 다듬는데 사용한다.
- (4) **연마기(polishing machine)** : 연마하는 작업을 보다 더 특수화된 완성가공공정(평활작업)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작업은 **펠트디스크(felt disc)**기에 의하여 수행하며 ; 이러한 기계도 또한 이 호에 해당한다.
- (5) **조각기(engraving machine)** :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의 것이 있으며 ; 다만, 모래의 분사에 의한 조각기는 **제외한다(제8424호)**.
- (6) **광학용·안경용이나 시계용 유리의 완성가공기나 연마기** : 이러한 기계에는 안경용 렌즈·프리즘·안경렌즈[구형·링형·원통형·다초점(多焦點) 등]의 표면을 닦게 함으로써 광학용의 유리로 성형이나 연마하는 기계 등을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가공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해당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수공구(hand tool)이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제8205호**)
- (b) **제8445호**나 **제8446호**의 유리접유를 꼬아서 실로 만드는 기계, 제작기와 그 밖의 기계
- (c) **제8456호**의 레이저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초음파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공작기계와 그 밖의 기계
- (d)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식 공구(**제8467호**)
- (e) 파쇄기·분쇄기·혼합기·형(型)입기·조괴기(造塊機)·조형기(casting machines)·벽돌제조기 등(**제8474호**)
- (f)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를 절단(sawing)·스크라이빙(scribing)·스코어링(scoring)하는 기계 (예: 웨이퍼 절단기)와 반도체 보울(boule)·웨이퍼나 평판디스플레이의 그라인딩(grinding)·폴리싱(polishing)·래핑(lapping)용 기계(**제8486호**)



[소호해설]

소호 제8464.10호

이 소호에서는 제8464호 해설(I)의 (A)항에서 설명된 톱기계(sawing machine)와 절단기(cutting machine)를 포함한다.

**84.65 -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인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 8465.1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65.2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기타
- 8465.91 -- 톱 기계
- 8465.92 --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 8465.93 --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광택기
- 8465.94 -- 굽힘기나 조립기
- 8465.95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 8465.96 --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박피기
- 8465.99 -- 기타

이 호에는 목재(나무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질(硬質) 고무·경질(硬質)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뿔·커로우조우(corozo)·진주 모패(母貝)·상아(ivory) 등]을 성형하거나 표면 가공(절단·성형과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관련된 재료일지라도 가공이 개시될 당시에 경질(硬質) 재료의 특성을 갖지 않는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노글노글한 플라스틱이나 비경화 고무를 절단하거나 베어내는 기계도 제외하기 때문이다(**제8477호**). 더군다나 이 호에는 플라스틱 재료를 성형하는 기계(**제8477호**)·목재의 작은 조각이나 섬유나 그 밖의 목질의 재료를 응집하거나 성형하는 기계(**제8479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와 같은 알갱이나 가루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호에서 언급한 재료의 처리용으로 고려되는 것일 지라도, 일반적으로 이 호에서도 또한 재료나 그 표면을 가공하지 않는 기능을 갖는 기기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탈수처리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하거나 노화시키는 기계(**제8419호**)·코르크의 팽창용 기계(**제8419호**)나 목재를 압축·응집·침투시키는 기계(**제8479호**)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 유형의 기계는 보통 상(床)·벤치·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은 베이스플레이트·장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 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직식 공구와 구별한다.

(A)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화하지 않는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여러 가지 형태의 **톱 기계** : 이들은 일반적으로 톱니를 가지는 날이나 체인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왕복식의 공구를 갖춘 톱 기계 : 예를 들면, 곧은 톱날을 갖춘 통나무 절단용 톱기계·원목상의 목재를 판재로 절단하는 실톱과 수직식이나 수평식의 틀톱

- (b) 공구가 회전하는 톱기계 : 이들 기계에는 수직식이나 수평식의 띠톱·사등분용과 양분용의 띠톱과 같은 체인톱과 목재 마루용 블록(block)·널판지 조각·프리즈(frieze) 제조용의 다양한 띠톱기계와 제지공업용의 띠톱과 같은 캐리옷(chariot)이나 테이블형 띠톱과 여러 가지의 특수 기계를 포함한다.
- (c) 공구가 회전 운동을 하는 톱기계 : 이들 대다수의 그룹에는 한 개 이상의 톱니가 달린 톱날이 원형 운동으로 움직이면서 절단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흔들이 톱·직선형의 공구치기(tool stroke)를 갖춘 절단톱·방사형의 톱·원모양의 통나무 절단톱·가장자리를 내는 원형톱·벤치톱·슬라이딩 테이블톱·원모양의 패널 절단톱을 포함한다.
- (2) **몰딩머신(moulding machine)과 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 : 재료의 칩을 제거하는 날을 사용해서 재료의 표면을 가공하는 것이다. 이들에는 한 면이나 양면을 가공하는 기계와 네 면 모두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
- (3) **몰딩용(moulding)과 밀링용(milling) 기계** : 재료의 칩을 제거하는 프로파일(profile)된 회전공구를 사용해서 가공물을 성형하는 것이다. 이들에는 예를 들면, 스핀들 조형기·한쪽 끝 장부 형성(single-end tenoning) 기계·열량이음용(dovetailing) 기계·홈파기·카운터싱킹(countersinking) 머신, 패턴의 밀링(milling)용과 리세싱(recessing) 머신·카피(copying)머신(선반은 제외한다)·1·2·3이나 4면 몰딩(moulding) 머신·가공물을 회전하면서 프로파일(profile)을 성형하는 기계·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과 통나무제재(log-milling) 머신(canter)을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CNC 밀링머신을 포함한다.
- (4) **머시닝센터(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 CNC 복합공작기계(CNC work centre)**로도 알려져 있으며 : 이 기계는 여러 가지 기계적 조작을 수행하며 머시닝(machining)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magazine)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한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매거진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단일**의 공구이나 수개의 공구를 사용해서 동시나 연속가공을 하는 한 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 [예: 다축(multiple-spindle) 밀링머신이나 다축절단(multiple-cutter) 밀링머신]는 드릴링머신이나 밀링머신과 같이 각 해당되는 소호로 분류한다.
- (5) **연삭기(grinding machine)·샌딩머신(sanding machine)·광택기(polishing machi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을 사용하는 연삭기는 주로 커로우조우(corozo)·경질(硬質) 고무·뿔과 상아(ivory)와 같은 경질물에 사용한다.
- 샌딩머신(sanding machine)은 가공물의 정확한 치수는 물론 표면 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마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 그룹에는 벨트식 샌더·원판형 샌더·보빈(bobbin)식과 드럼식 샌더와 같은 진동 운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스무딩(smoothing) 머신으로 알려진 기계도 또한 이 그룹에 포함하는 것이다.
- 광택기(polishing machine)은 이미 다듬질(smooth finish)되어 있는 가공물에 밴드·드럼이나 신축성의 롤러에 의하여 광택을 내어주는 것이다.
- (6) **굽힘기(bending machine)** : 이것은 기계의 구조상 작용으로 가공물의 형태나 물리적 특성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7) **조립기계(assembly machine)**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결합제·접착제나 점성의 종이로 두 개 이상의 부분품을 조립하는 기계. 이 그룹에는 베니어 접합기계·목판접합기계·패널성형기계·프레임 클램프·카케이스(carcass) 클램프·합판과 층판용의 프레스·베니어링 프레스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들은 목재 표면에 아교를 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결합하기도 한다.
- (b) 못·스테인플·와이어 등을 사용해서 결합하는 기계
- (c) 결합제나 파스너(fastener)가 없이 결합하는 기계. 예를 들면, 스퀴즈 프레스(squeeze press)

(8)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 이들은 회전공구(스핀들이나 비트)를 사용해서 원형 구멍을 뚫는데 주로 사용한다. 공구의 중심과 천공하려는 구멍의 중심은 동일 축에 있다. 이들 그룹은 단일형과 복합형의 드릴링스핀들 머신(drilling spindle machine)·구멍을 매듭 짓는 드릴링머신과 구멍을 맞추는 드릴링머신을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CNC 드릴링 머신을 포함한다.

(9)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 이들은 끌·모티스(mortice) 체인이나 라우팅(routing) 비트를 사용해서 비원통형의 구멍을 파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늘고 긴 홈용이나 끌이나 체인 모티싱(morticing)기계

(10) **스플리팅(splitting)기·스탬핑(stamping)머신·프래그멘팅(fragmenting)머신·박피기와 슬라이싱(slicing)기** : 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칩(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스플리팅(splitting)기 : 썰기작용에 의해서 결합된 섬유질을 쪼개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통나무·장작과 뿌리 쪼개는 기계와 버드나무·대나무와 등나무 쪼개는 기계를 포함한다.
- (b) 스탬핑머신(stamping machine) : 충격 절단에 의하여 성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베니어 스탬핑 머신이 있다.
- (c) 프래그먼팅머신(fragmenting machine) : 목재를 아주 작은 조각이나 이와 유사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슬리버절단기·파티클(particle) 제조용 기계·목모(木毛) 제조용 기계와 초핑(chopping) 머신과 치핑(chipping) 머신을 포함한다.

그러나, 목재펠프 제조용의 섬유질분리기(defibrator)는 **제외하며 제8439호**에 분류한다.

(d) 박피기나 슬라이싱(slicing)기 : 슬라이싱(얇은판 제조용 기계)이나 박피에 의하여 얇은 판을 만들도록 가장자리를 곧게 절단하는데 사용한다[합판 제조용의 베니어(veneer)나 얇은 판을 만드는 기계].

이 그룹에는 또한 직선형의 날을 사용하는 베니어 절단기와 마이터(mitre) 트리밍(trimming)머신과 창살 절단기를 포함한다.

- (11) **선반(lathe)** : 이것은 기계 자체의 축을 움직여서 가공물을 성형하는데 사용하며, 공구는 회전되지 않는다. 이들 기계 그룹에는 여러 가지 선반을 포함하며, 모방 선반(copying lathe)을 포함한다.
- (12) **나무가지를 자르는 기계(tree delimiting machine)나 나무를 통나무로 자르는 기계(tree bucking machine)**
- (13) **목재용 박피기**(통나무 박피기·기둥 박피기 등)(제8424호의 물분사식의 박피기와 제8479호의 박피용 드럼을 제외한다)
- (14) **통나무 조제용의 용이 제거기**(예: 제지펄프 제조용의 것)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작업들 사이에 공구를 교환하지 않고 여러 형의 기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복합된 조이너리(joinery) 머신** : 단일 유닛 속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수 개의 기계를 갖는 것으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형의 기계는 각 작업과정 사이에서 가공물에 수동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작업과 복합된 표면 평삭(平削)용의 기계와 톱질(sawing)-몰딩(moulding)-모티싱(morticing)기를 포함한다.
- (2) **다목적기계** : 이것은 앞 항의 그룹과는 다른 기계로 수동 작업 이외에 가공물의 삼입 후 필요한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여러 개의 스피들을 갖춘 한쪽 끝 장부 형성용(single-end tenoning)기·양쪽 끝 장부 형성용(double-end tenoning)기·하드웨어나 맞춤 못 구멍 등의 위치 잡는 기계·접착제와 마감재(finishing)(베니어스트립 제조용이나 얇은 나무 조각으로 패널제조용)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B) 특정 공업용으로 특수화된 가공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통제조기**(예: 통널판을 맞추는 기계·통널판을 다듬는 기계·통널판 굴곡기·통널판의 홈파는 기계; 통 조립기; 통에 테를 감는 기계). 다만, 통이나 통널판의 증열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 (2) **연필제조 공업용의 기계**
- (3) **철도용 받침목의 모티싱용(morticing)이나 천공용의 기계**
- (4) **목조(木彫)·조각기(모방기를 포함한다)**
- (5) **목분(wood flour) 그라인딩 머신(grinding machine)**(다만, 제지펄프 공업용의 섬유질 제거기(defibrato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39호).
- (6) **상자·크레이트(crate)·케이스·통(cask) 등의 못질·스테인플링·접착이나 그 밖의 조립을 하는 기계**
- (7) **목제단추 제조기**
- (8) **나막신·나무로 만든 구두창이나 구두의 목형을 제조하는 기계**

(9) **버드나무 가지(osier)·케인(cane) 등을 가공하는 기계**[깎질제거·세로로 쪼개기·등글게 하기 등]. 다만, 바구니 세공용이나 지조(枝條) 세공용의 제조 기계는 **제외한다(제8479호)**.

이 호에는 **코르크**(예: 톱질·절단·연마)·**삐**·**경질(硬質)고무**·**경질(硬質)플라스틱과 이와 유사한 목공기계와 동일한 경질(硬質)물의 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목공 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었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열거된 가공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종이 펄프의 제조에 사용하는 대나무파쇄기·우드칩(wood chip) 절단기와 통나무 분쇄기(**제8439호**)
- (b) **제8456호**에 해당하는 레이저 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 초음파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와 그 밖의 기계
- (c)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식 공구(**제8467호**)
- (d) 반도체패키지의 금속으로 만든 리드(lead)의 이물질질을 세척하거나 제거하는 기계(**제8486호**)

84.66 -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466.20 - 가공용 홀더

8466.30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 기타

8466.91 -- 제8464호의 기계용

8466.92 -- 제8465호의 기계용

8466.93 --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8466.94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분류한다.

(A)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의 **부분품**

(B) 이들 기계의 **부속품**. 즉, 기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조 장치(예: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 정밀도를 높이는 장치;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

(C)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이 호에 분류하는 광범위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툴홀더(tool holder)** :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거나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툴홀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척(chuck) ; 탭(tap)과 드릴용의 콜렛(collet) ; 선반의 툴 포스트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그라인딩 휠 홀더(grinding wheel holder) ; 호닝기(honing machine)용의 호닝 보디(honing body) ; 보링 바(boring bar) ; 터릿(turret) 선반용의 터릿 등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각종 툴홀더(tool holder)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홀더(holder)는 보통 **제8205호나 제8467호**의 공구용으로 설계되었다. 다만, 이 호에는 플렉시블 축용의 툴홀더(tool holder)도 포함한다(**제8467호와 제8501호**의 해설 참조).

- (2) **가공용 홀더(work holder)** : 기계에 의하여 가공될 부분을 지지하며 때때로 조작(특수한 작업의 요구에 따라)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선반의 센터 ; 여러 가지의 기계식이나 압축공기식 선반 척(lathe chuck)과 클램핑 조오(clamping jaw) ; 가공물 지지용의 판과 테이블(마이크로미터식 조절이나 세트 장치의 것 인지에 상관없다) ; 클램프(clamp)와 앵글 플레이트(angle plate) ; 췌기류(chock and wedge) ; 고정식·회전식이나 조절식의 기계용 바이스 ; 고정장치(steady rest)[선삭(旋削) 작업 중에 공구의 압력에 의한 굴곡을 방지하고 진동을 없애기 위하여 긴 부분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링(ring) 모양의 장치]

- (3) **노칭(notching)용·구면(球面) 절삭용 등의 보조 장치**

- (4) **모방용의 부속장치**(전기적이나 전자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포함한다) : 모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 (5) **표면완성 가공용의 부속장치** : 선반·평삭(平削)반·형삭반 등에 사용한다.

- (6) **기계식이나 압축공기식 부속장치** : 가공공정에서 가공과정이나 공구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데 사용**한다.

- (7) **특수한 보조적 부속장치** : 실제의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계의 정밀도를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심출(芯出 : centring)이나 레벨링(levelling) 용구 ; 할출대(割出臺 : dividing head) ; 할출판 ; 마이크로미터 캐리지 스톱(carriage stop)·캐리지 스페이싱 어태치먼트(carriage spacing attachment) 등. 이와 같은 부속품은 자(scale)의 눈금을 읽거나 조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광학적 장치를 갖추었을지라도 이 호에 해당한다(예: 광학적 할출대). 다만, 이 호에서는 그 자체가 본래 광학적 장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심출현미경(제9011호)·정열(整列)용이나 레벨링용의 망원경과 윤곽투경시험기(제9031호) 등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6804호의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연마용 물품
- (b) 자기(磁氣)식이나 전자(電磁)식의 오일 여과기(제8421호)
- (c)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의 보조 장치[예: 가공 중에 있는 대단히 크거나 무거운 피가공물을 지지하기 위하여 때때로 사용하는 수평잭(jack)](제8425호 등)
- (d) 기어박스과 그 밖의 변속 클러치와 이와 유사한 전동 장치(제8483호)
- (e) 제8486호의 기계와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홀더·툴홀더(tool holder)와 공작기계용이나 워터젯 절단기용의 그 밖의 특수한 부착물을 포함한다](제8486호)
- (f) 전기식[전자(電子)식을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전자식 척(magnetic chuck)과 수치제어패널](제85류)
- (g)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기기(제9031호)
- (h) 적산화전계와 생산량계(제9029호)
- (ij) 기계에 부착되는 브러시(제9603호)

84.67 -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7.19 -- 기타

-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 -- 각종 드릴

8467.22 -- 톱

8467.29 -- 기타

- 그 밖의 공구

8467.81 -- 체인톱

8467.89 -- 기타

- 부분품

8467.91 -- 체인톱의 것

8467.92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467.99 -- 기타

이 호에는 전동기·압축공기 원동기[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피스톤(piston)]·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원동기(예: 소형 유체터빈)를 갖춘 공구를 분류하며 ; 압축공기 원동기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압축공기원에 의하여 작동되며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점화용 축전지가 종종 분리되어 있다. 압축공기식의 것에 있어서는 압축공기의 작용이 때때로 액압 연결에 의하여 보완된다.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만**을 분류한다. “수지식 공구(tool for working in the hand)”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 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게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작업 중 전 중량을 지지하는 피로(fatigue)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지지구[예: 삼각대·잭레그(jackleg)·인양용의 테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하는 어떤 수지식 공구는 **일시적으로** 지지대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용구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수지식 공구이고 지지 용구와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일부 공구는 보조용구와 함께 고정될 수 있다[예: 팬휠(fanwheel)과 작업 중 먼지를 제거하고 모아주는 먼지주머니].

이 호에서는 중량·사이즈 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구는 **제외한다**. 또한 벽·벤치(臺: bench)·상(床: floor) 등에 고착시키기 위하여 베이스 플레이트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춘 공구(휴대식인지에 상관없다)·레일 위를 주행시키기 위한 장치를 갖춘 공구(예: 철도나 받침목에 홈이나 구멍을 파는 기계)와 사람이 뒤에서 밀거나 이와 유사하게 손으로 조작하는 바퀴 달린 기계[예: 콘크리트·대리석·목재용 플로어 그라인딩머신(grinding machine)]도 **제외한다**.

나아가서 한 개 이상의 공구를 갖춘, 플렉시블 축(flexible shaft)을 갖춘 불꽃점화 내연기관이나 별도의 전동기로 구성된 결합장치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툴홀더(tool holder)는 **제8466호**에, 플렉시블 축을 갖춘 원동기는 **제8407호**나 **제8501호**에 각 경우에 따라 분류하며 그리고 공구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공구는 다양한 재료를 작업하기 위한 공구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포함한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에 **따라** 이 호의 공구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드릴링(drilling)머신·태핑(tapping)머신·리이밍(reaming)머신
- (2) 보링(boring)기계·착암기(鑿岩機) 등
- (3) 렌치·나사돌리개·너트 셋터(nut setter)
- (4) 설계용·측정용·도로 공사용이나 유사한 기기
- (5) 기계식 줄(filing machine)·연삭기(grinder)·사포기(砂布機: sander)·연마기(polisher) 등
- (6) 와이어브러시
- (7) 원형톱과 체인톱과 이와 유사한 것
- (8) 칩핑(chipping) 해머·스케일 제거용 해머·코킹(caulking) 해머·리벳팅(riveting) 해머·콘크리트 파쇄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해머
- (9) 압착형(squeeze-type)의 리벳터(riveter) ; 리벳(rivet) 제거기와 그 밖의 끝의 기능을 가진 기기
- (10) 금속판의 절단기[전단형(剪斷型)과 니블러(nibbler)형]
- (11) 구조용의 샌드 래머(sand rammer). 주물로부터 심형(心型)을 제거하는 공구·구조용 바이브레이터
- (12) 도로 건설이나 유지용의 토양 다지는 램머
- (13) 자동식 삽
- (14) 콘크리트의 흐름과 셋팅을 촉진하는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vibrator)
- (15) 울타리 정리기
- (16) 액압구동식 보일러형 스케일 제거기
- (17) 차량 정비소용의 압축공기식 그리이스 피스톨
- (18) 예를 들면, 잔디 다듬기용, 담장이풀·정원의 구석이나 관목 밑까지의 절단용 휴대식 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는 가벼운 금속 프레임 속에 갖춰진 모터(motor)와 보통 한 개의 가느다란 나일론 실로 구성되는 절단장치를 갖는다.

- (19) 휴대용 풀 베는 기계(portable brush-cutter)로서 내장 모터·드라이브 샤프트[리지드(rigid) 방식이나 유연 방식]와 툴 홀더(tool holder)를 갖고 있으며 툴 홀더에 장착하기 위한 교환식의 절삭공구와 함께 제시된 것
- (20) 기성복 산업에서 직물을 절단하기 위한 절단기
- (21) 조각용 공구
- (22) 고정된 절단용 날과 이동식 절단용 날이 붙박이의 전기식 모터에 의해 작동되고, 양재사와 여성모자 제조 작업장과 가정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식 손가위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구의 부분품(제8466호의 툴 홀더를 제외한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돌·도자제·응결된 연마재료로 만든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샤프닝휠(sharpening wheel)·폴리싱휠(polishing wheel)·커팅휠(cutt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제6804호)
- (b) 제82류의 공구
- (c) 공기압축기(제8414호)
- (d) 액체나 가루의 분무기·손으로 작동하는 스프레이건·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것(제8424호)
- (e) 전기식의 잔디 깎는 기계(제8433호)
- (f)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
- (g) 제8510호의 전기식 면도기와 이발기와 모발제거기
- (h) 의료용이나 치과용의 전기식 수공구(hand tool)(제9018호)

84.68 -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68.10 - 수지식 취관(吹管)
- 8468.20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 8468.80 - 그 밖의 기기
- 8468.90 -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납땜용이나 용접용 기기로서 절단이 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스를 사용하거나 **제8515호**의 본문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가공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오로지 절단용으로만 제작된 기계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B)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I) 가스작동식의 금속가공용 기기 등

이 그룹의 기기는 산소나 공기의 분사 중에서 가연성(可燃性) 가스를 연소시켜서 매우 고온의 불꽃을 발생시킴으로써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기는 이 호에 속하는 작업에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고온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작업(예: 어떤 작업을 위한 예열이나 마모된 부분이나 공간을 금속으로 충전하는 작업)에도 사용하며; 실제에 있어서 어떤 기기는 다른 작업에 전용되는 것도 있으나 이와 같은 기기도 이 호의 다른 기기와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조작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의 모든 기기에는 같거나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출구를 갖춘 노즐(nozzle)에 두 개의 가스를 도입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가스의 하나는 가연성의 것(아세틸렌·부탄·프로판·석탄가스·수소 등)이고 다른 하나는 압축된 공기나 산소이다.

이 호에는 수동식(hand-operated) 기기와 기계도 포함한다.

(A) 수동식의 가스용접기기 등[취관(吹管 : blowpipe)]

취관(blowpipe)은 고압이나 저압의 가연성(可燃性) 가스원(源)의 어느 것에 접속하도록 설계 되어 있는가에 따라 고압형이나 저압형의 것이라고 칭한다. 고압형에 있어서의 압축도는 불꽃의 분사에 필요한 속도를 가스에 주는 것이며; 저압형에서는 압축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형의 취관(blowpipe)은 그 밖의 점에 있어 다소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설계면에 있어서 가스가 점화되는 출구, 즉, 노즐에 공급관이 부착된 자루(handle)나 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조정밸브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 장치는 플렉시블한 배관에 의하여 외부의 가스 공급원에 접속되어 있다.

관계되는 작업의 종류[예: 고로(高爐)의 태핑(tapping)·리벳(rivet)의 제거·홈파기(grooving)나 간단한 가열]에 이 기기를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管)과 노즐(nozzle)은 보통 호환성의 것으로 되어 있다[여러 가지 개구의 노즐·다중노즐의 오리피스(orifice)·불꽃을 분리하는 노즐 등]. 어떤 취관은 특히 특정의 작업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냉장치를 갖춘 중노동용의 용접용 취관이 있다.

(B) 용접용 등의 기기

이들 기계는 앞(A)의 수동식 기기와 동일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주로 고정식이나 조절 가능한 취관으로 되어 있다. 기계의 다른 부분[예: 공급테이블·조오(jaw)·송대(送臺: slide-rest)와 집합아암(jointed arm)]은 피작업물을 고정·안내하거나 전진시키거나 작업의 공정에 따라 노즐을 이동이나 조절하거나 한다.

(C) 표면 열처리용의 기기

이들 기계는 처리하여야 할 물체의 모양에 따라 조절되는 많은 노즐로 되어 있다. 노즐로부터 나온 불꽃은 표면 위에 투사되어 요구되는 온도까지 급속히 올라감으로써 이와 같은 강열한 열로 표면처리되나, 이러한 열은 표면 밑까지 침투하지는 못한다. 일단, 표면이 요구되는 열처리 온도에 이르게 되면 냉각액의 분무가 그 물품에 닿게 되거나 액조(液槽)에 침지(沈漬)된다.

(II) 가스작동식의 열가소성 재료의 용접용 기기

또한 이 호에는 열 가소성 재료나 제품을 용접하거나 밀봉하는 특정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용접용 취관으로부터 불꽃이나 가열된 공기·질소나 불활성 가스의 분사에 의하여 조작된다. 공기나 가스는 가스 가열관을 통과함으로써 가열된다.

(III) 가스작동식 이외의 용접용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홈이 파진 휠(grooved wheel)이나 가열된 철(heated iron)에 의하여 용접하는 기계와 기계식 기구[납땀인두(제8205호)와 제8515호의 전기식 기구는 제외한다]
- (2) 마찰 용접기(friction welding machine)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또한 이 호의 기기 부분품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지지물[볼(ball)·롤러 등]과 같은 부속장치도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8205호의 블로우 램프(blow lamp)와 브레이징(brazing) 램프
- (b) 용융(鎔融 : molten) 금속의 분사용의 기기(제8424호)
- (c) 암석이나 콘크리트를 절단하거나 파괴하는 기구 : 산소의 분사로 철강을 태워서 발생하는 고온을 이용한다(제8479호).
- (d) 가스와 전기를 겸용하는 용접용이나 납땜용의 기기(제8515호)

[84.69]

84.70 -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 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8470.29 -- 기타

8470.30 - 그 밖의 계산기

8470.50 - 금전등록기

8470.90 - 기타

이 호의 모든 기계는 어떤 종류의 금전등록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통된 특성이란 적어도 몇 자리의 숫자로 된 두 개 이상의 수를 더할 수 있는 계산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수를 하나씩 세거나 더하기만을 하는 기구는 계산기구로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예를 들면, 우표첨부기·적산회전계·생산량계 등에 결합되어 있는 기구는 계산기구로 보지 않는다). 이 호의 기계는 수동식이나 전동식으로 조작되며, 계산조작은 기계식으로 행해지거나 전자식(電磁式: electro-magnetic)·전자식(電子式: electronic)이나 유체(流體)식 장치에 의하여 행해진다.

(A)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이 그룹에는 단순히 가감산을 행하는 가장 간단한 형식의 기계로부터 사칙연산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계산(예: 자승근 산출·누승 계산·삼각함수 계산)을 행하는 복잡한 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산기를 포함한다. 특히, 이 호에는 포켓형 전자계산기와 사무실용의 전자계산기가 포함되며,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 수첩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9호 참조).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계산기는 특히 처리 진행 중에 논리적 판단에 의하여 그 실행을 변경하도록 기계에 요구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계산기는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결합하고 있다.

계산기는 다음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자료수동입력장치**(스톱식·활자식·키보드식 등): 다만, 이것은 되풀이되거나 미리 설정된 자료의 자동적 입력을 행하기 위한 보조 장치(천공카드·천공테이프·자기테이프 등의 독취장치)를 갖추 수도 있다.

- (2) **계산 장치** : 이것은 일종의 키나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작되며, 프로그램에는 고정식의 것이나 프로그램요소의 대체나 프로그램의 지시의 변경에 의한 수정방식의 것이 있다.
- (3) **출력장치** : 이것은 계산결과를 시각적인 표시나 프린트 아웃(print-out)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장치이다. “프린터(printer)”기에는 계산 결과의 인쇄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적인 자료도 인쇄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다만, 이러한 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산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

프린팅 장치를 갖춘 계산기는 숫자와 일정한 범위내의 기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밴드(band)상이나 롤 상의 종이에 수직으로만 인쇄를 행한다는 점에서 회계기와 다르다. 어떤 것에는 계산결과를 자료매체에 부호화한 형태로 기록하기 위한 보조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계산기의 구성부품의 일부(계산장치·보조장치 등)에는 일체형의 것도 있고 전선으로 접속된 별개의 장치로 된 것도 있다.

(B) 회계기(accounting machine)

이러한 기계는 회계장부·회계장표(accounting documents) 등의 기장을 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기계에는 회계(즉, 일련의 항목의 금액을 합계하는 것)의 기능과 이미 행해진 회계 사무를 적절히 기술하기 위한 숫자·문자나 기호를 인쇄하는 기능이 결부되어 있다.

회계기의 구조는 계산기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회계기에는 차변-대변 조작 등의 여러 가지 자료용의 수동 입력장치 외에도 계산기의 경우와 같이 회계번호(account No.)·고객의 주소와 성명 등 되풀이 되는 자료나 미리 설정된 자료(예: 계정 잔고)를 넣기 위해 천공카드·천공테이프·자기테이프·자기카드 등의 독취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회계기는 수직·수평의 양방향으로 인쇄될 수 있는 숫자나 문자-숫자의 프린팅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 이것이 계산기와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이다.

대체로 이러한 기계는 지불전표·청구서·루스-리프(loose-leaf)식의 일계장(day book)·분개장(journal)·원장(ledger) 등이나 정리카드(filing card)와 같은 특별한 인쇄서식을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으며, 회계기의 어떤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서식(예: 청구서와 관련되는 일계장과 원장)에 동시에 인자할 수도 있다.

회계기에는 때때로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어떤 것은 카드 위에 명료하게 인자하고 동시에 해당 카드의 일면에 있는 자기(磁氣) 트랙에 그 결과를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 기계에 있어서의 다음의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회계기는 계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체식의 것도 있고 또한 전기적으로 접속된 별개의 단위기계로 구성된 것도 있다.

(C) 금전등록기(cash register)

이 그룹에는 금전등록기를 포함한다(계산 기계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기계는 상점·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 품목의 코드번호·판매수량·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이다.

자료는 키보드와 스톱(stop)·레버나 핸들에 의하여 수동식으로 넣어지거나 예를 들면, 바코드 판독기를 사용하여 자동 입력한다. 그러나 계산기나 회계기와 마찬가지로 되풀이 되는 자료나 미리 설정된 자료의 자동입력 보조 장치(예: 카드나 테이프의 독취장취)가 갖추어진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처리결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고객용의 티켓과 계산 기록용 롤지에 인쇄되며 계산 기록용 롤지에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로부터 정기적으로 떨어져 나온다.

이들 기계는 흔히 현금을 보관해두는 돈궤나 서랍이 결합되어 있다.

이들 기계는 또한 계산 용량을 증가시키는 승산기·교체수수료 계산기·자동 거스름돈 지급기·판매증지발행기(trading stamp dispenser)·크레딧(credit)카드 독취기·수표숫자검증기나 거래 중에 있는 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자료 매체에 부호화된 형태로 전사하는 기구와 같은 장치와 연결하여 결합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기계들이 분리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금전등록기(온라인 방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예를 들면, 동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금전등록기의 메모리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이들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신용카드나 데빗 카드(debit card)에 의한 전자지불용 단말기를 포함한다. 이 단말기는 전화망으로 권한 있는 금융기관에 연결하여 거래를 완성시키고 기록하며 데빗 금액과 신용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사용한다.

(D) 계산기기를 갖춘 그 밖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우편요금계기** : 이것은 우표 대신에 디자인을 봉투에 인쇄하는 것으로서 인쇄된 우편요금의 금액을 집계하는 재계산이 불가능한(non-reversible) 합계기구를 갖추고 있다. 이밖에 이 기계에는 봉투에 다른 인쇄(예: 광고 선전용 표어)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있다.
- (2) **표권 발행기** : 표권(예: 영화용나 철도용의 표권)을 발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록하고 합계를 내는 것이며 ; 어떤 것은 표권에 인쇄하는 것도 있다.
- (3) 경마장용의 **계산기(totalisator)** : 표권을 발행하고 건 돈의 총액을 기록하고 집계하는 것이다. 어떤 복잡한 기계의 경우는 승산(odds)을 계산하기도 한다.

발행되는 표권 등을 세기만 하고 금액을 집계하지 않는 기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72호나 코인 작동식의 것은 제8476호)**.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8471호**의 자료처리기계
- (b) 중량 합계를 내는 중량 측정기기(**제8423호**나 **제9016호**)
- (c) 계산척(slide rule)·계산반·실린더(cylinder)형 계산기와 계산척을 기초로 계산하는 용구나 그 밖의 수학적 계산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계산 용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소정의 방법에 따라 철판로 숫자를 선택하여 계산을 하는 휴대형 가감산기구(**제9017호**)
- (d) **제9029호**에 해당하는 적산회전계·생산량계 등과 같이 단위당 계량을 하는 기기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471.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 8471.41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471.49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 8471.50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471.60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8471.70 - 기억장치
- 8471.8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 8471.90 - 기타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료처리는 하나나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자료처리조작용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조작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자동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즉, 업무처리 중 수동적인 조작을 개입하지 않는 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는 주로 전자신호를 이용하지만 그 밖의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일체형의 것과 분리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된 장치(system)의 형식의 것이 있다.

위에서 해설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호가 없으면 잔여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E)부분 참조).

(A)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6호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한다**.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억능력과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부호화된 자료를 처리하며, 부호는 일정한 조[2진(進)부호·ISO표준 6비트 부호 등]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입력은 일반적으로 자기테이프 등의 자료매체를 사용하거나 원본을 직접 독취하는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키보드에 의한 수동식 입력장치도 있으며 입력은 어떤 종류의 기기(예: 측정기기)에 의하여 직접 행해질 수도 있다.

입력 자료는 입력장치에 의하여 기호로 변환되어 기계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기억장치에 기억된다.

자료와 프로그램의 일부나 프로그램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보조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지시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 응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의 진행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처리프로그램·번역프로그램과 자료를 기억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진 주기억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출력장치(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갖춘 하나의 “시스템(system)”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이 류의 소호주 제2호 참조). 상호 접속은 유선이나 무선으로 할 수 있다.

완전한 자동자료처리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기기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1)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 연산과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별개의 단위기기의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다.
- (2) **입력장치(input unit)** : 입력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 (3) **출력장치(output unit)** : 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쇄된 텍스트·도형(graph)·영상(display) 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자료의 처리·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화된 자료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 중 두 가지의 장치(예: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는 단일의 기계로 결합될 수도 있다.

하나나 그 이상의 기기가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한다하더라도, 완전한(complete)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은 이 호에 분류한다[아래 **분리되어 제시하는 단위기기** (B) 참조].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료전송용 단말장치(data terminal)로서의 원격입력장치와 원격출력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장치에는 입·출력장치 이외에도 예를 들면,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하나 이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해당 기계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주변기기(peripheral unit)를 포함한다(아래 (B)항 참조). 이러한 주변기기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해당 장치의 양단)의 사이에 끼워져 있다. 비록 접속용과 변환용의 기기(채널 어댑터와 신호 변환기)가 입력장치의 전면이나 출력장치의 후면에 접속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시스템은 다용도, 예를 들면, 산업·무역·과학연구·공·사기관에 사용한다[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정기능(제84류 주제6호마목)을 수행하는 기계에 대한 분류는 제84류 총설 E항 참조].

(B) 분리 제시하는 단위기기(separately presented unit)

이 류의 주 제6호라목과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앞에서 설명한 (A)와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있다.

-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 (b) 이 류의 주 제6호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

(ii)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

(iii)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의 주 제6호라목과 마목에 의해 제외하지 않을 것

이 류의 주 제6호다목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b) (ii)와 (iii)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엑스 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와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 처리 시스템의 구성단위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절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6호마목 참조]. 제84류의 주 제6호다목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필요하다면 통칙 제3호가목을 병행하여 적용)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분리 제시하는 기기로, 설비(예: 신호변환기)를 추가함으로써 자료처리기에 직접 연결되는 측정과 검사기기 등의 장치들은 자동자료처리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치들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중앙처리장치·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단위기기를 포함한다.

- (1) 중앙처리장치의 외부에 있는 **추가 기억장치**[자기카드구동장치·자기디스크기억장치·광학 디스크기억장치·테이프자동장착기와 고속백업용 저장장치·광학디스크드라이브용 고속백업용 저장장치(“광학디스크 주크 박스(optical disc jukebox)”라고도 한다) 등]. 추가기억장치에는 “독자적인 저장형식(proprietary storage format)”으로 알려진 추가자료 저장장치도 포함 되는데 자동자료처리기의 내부 설치용인지 외부설치 용인지에 상관없다. 추가자료 저장 장치는 디스크나 테이프 드라이브(drive)의 형태일 수도 있다.
- (2) **중앙처리장치의 처리능력 증가를 위한 추가장치**(예: 부동소수점 처리장치)
- (3) **제어용 기기(control unit)와 접속용 기기(adaptor unit)**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이나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 그러나 유선이나 무선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이나 접속용 단위기기는 **제외한다(제8517호)**.
- (4)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 : 입력용으로는 외부 신호를 해당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는 기계가 행한 처리 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기계에서 변환시키는 것이다.
- (5)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X-Y co-ordinate input device)** : 자동자료처리기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라이트 펜(light pen)·조이스틱(joystick)·트랙 볼(track ball)·터치스크린을 포함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인 그래픽 타블릿(graphic tablet)이 포함되는데 곡선이나 그 밖의 도형의 좌표를 검색하여 포착(capture)하거나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추적(trace)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감지용 평면으로 된 직사각형 보드와 궤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포인터(pointer)나 펜, 가로장(cross-piece)과 연결되어 자료입력을 가능케 하는 줌(zoom)으로 구성된다.

나아가서 이 범주에는 그래픽 타블릿(graphic tablet)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디지털라이저(digitizer)도 포함한다. 그러나 그래픽 타블릿이 원작의 예술물품과 그림을 제도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응용소프트웨어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상의 대상물을 제어하는데 사용하는데 반해, 디지털라이저(digitizer)는 일반적으로 하드카피(hard-copy) 형태로 존재하는 현존의 그림을 포착하는데 사용한다. 디지털라이저 지시장치(pointing device)는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손에 쥘 정도로 충분히 작아, 디지털라이저의 (활성화된) 감지구역 주위를 이동시킬 수 있다. 십자선 커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II)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데,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이나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 작성용이나 회계, 그 밖의 처리용의 장치(system)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자기식이나 광학식의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독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기계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a) 앞에서 설명한 (I)에 열거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바코드독취기(bar code reader)를 제외한다]
- (b) **제8470호**의 계산기·회계기·금전등록기[이러한 기계는 수동 입력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기테이프·디스크·씨디롬(CD-ROMs) 등의 부호화된 형태의 자료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 그룹의 기계와 상이하하다]
- (c) 자동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 머신(**제8472호**)

(A)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모양의 문자를 판독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나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 (1) **자기(磁氣)식 판독기(magnetic reader)** : 이러한 형식의 기계에 있어서는 특수한 자기 잉크로 인쇄된 문자를 자화하여 자기식 판독헤드(magnetic reader head)에 의하여 전기적 임펄스(electric impulse)로 변환시켜서 계속적으로 해당 기억장치에 기억된 자료와 비교하거나 숫자부호(보통 2진부호)의 방법에 의하여 인식한다.

- (2) **광학식 판독기(optical reader)**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판독되며 2진부호방법에 따라 번역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판독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나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 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위에 설명한 판독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판독기가 그 밖의 기계(예: 자료를 자료 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그러한 부호화된 자료의 처리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B)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부호화된 정보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로 전사(傳寫)하는 기계** : 이러한 기계는 부호화된 정보를 한 형식의 자료매체로부터 다른 형식의 자료매체로 전사하거나 동일한 형식의 다른 매체로 전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후자의 범주에는 **재생기(reproducing machine)**가 포함되는데, 재생기는 새로운 테이프·디스크에 마스터테이프·자기식이나 광학식 디스크(예: DVD·CD-ROM)에 있는 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재생하는데 사용한다.
- (2) **집적회로(IC)내에 고정화된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기계(프로그래머)**. 이들 기계는 프로그래머의 내부 기억장치에 들어 있는 자료를 집적회로 위에 부호화된 형태로 전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프로그래머는 사용하는 프로그램화된 집적회로의 형태에 알맞도록 다음의 여러 가지 기술로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위에 정보를 새겨넣어(burn) 준다.

어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집적회로에 프로그램을 넘기기 전에 프로그램 결과를 서술하여 보거나 에뮬레이터(emulator) 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전원공급장치(일반적으로 **제8504호**)
- (b) 변조기-복조기[모뎀(modem)] : 이것은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얻은 정보를 전화망에 의해서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변조와 디지털 형태로 재변환시키는 장치이다(**제8517호**).
- (c)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 (d) 모의비행장치(flight simulator)(**제8805호**)



[소호해설]

소호 제8471.30호

이 소호에는 휴대용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 이의 케이스에는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고 중량은 10kg 이하이다. 평면 화면을 갖춘 이 기계는 외부의 전원 연결 없이 작동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와 연결을 위한 모뎀(modem)이나 다른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소호 제8471.90호

이 소호에는 특히, 일반적으로 키보드·디스플레이·광디스크드라이브 장치·스캐너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광디스크 파일링 시스템(optical disc filing system)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자료처리 기계가 제어장치로서 포함될 수 있으나,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다음 기능들을 수행한다.

- 전자스캔방식으로 이미지를 기록
- 문서정리보관
- 검색(retrieval)
- 화면에 표시
- 보통용지에 인쇄

84.72 -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 · 스텐실(stencil)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 자동지불기 · 주화분류기 ·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 · 연필깎이 · 천공기 · 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 등사기

8472.30 - 우편물의 분류기 · 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 · 봉합기 · 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8472.90 - 기타

이 호에는 앞의 두 개 호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무용 기계를 포함한다.

“사무용 기계(office machine)”란 말은 사무실 · 상점 · 공장 · 작업장 · 학교 · 철도역 ·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 · 서류 · 서식 · 기록문 · 계획서 등의 기재 · 기록 · 분류 · 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사무용 기계는 테이블 ·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베이스를 갖추지 않는 수공구류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82류)**.

이 호의 기계에는 수동식의 것 · 기계식의 것 · 전동식의 것(전자릴레이의 것 · 전자식의 것을 포함한다)일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헥토그래프(hectograph)식 **등사기**(예: 젤라틴과 알코올을 사용한 등사기) · 철필이나 타자기로 미리 긁어 놓은 등사용 원지를 사용하여 조작하는 **스텐실(stencil) 등사기** : 이 호에는 헥토그래프(hectograph)식의 장치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형 인쇄기(press)가 포함한다.

다만, 사무용의 것이라도 소형 인쇄기[예: 활판인쇄기 · 석판과 오프셋(offset) 인쇄기]와 돌을새김(emboss)을 한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판을 사용하는 등사기[스텐실(stencil)로 조작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사진식 복사기, 열식 복사기(**제8443호**)와 마이크로필름장치(**제90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2) **주소인쇄기(addressing machine)** : 청구서 · 편지 · 봉투 등에 주소를 신속하게 인쇄하는 것이며 ; 이 기계는 보통 일체(一體)의 작은 카드 · 금속 스텐실이나 울록볼록한 금속판을 작용하여 조작한다. 또한 이 호에는 스텐실(stencil)을 긁거나 금속판을 울록볼록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 기계와 많은 주소용의 판이나 스텐실로부터 어떤 특정의 것을 선별하는 기계가 포함한다.

(3) **표권발행기**[계산 기구를 갖춘 것(**제8470호**)과 코인작동식의 기계(**제8476호**)를 **제외한다**] : 이 호에는 표권을 천공(punching)하거나 롤 상태의 종이로부터 표권을 인쇄하여 발행[예: 버스와 전차의 차장(conductor)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하는 소형의 휴대용 기계가 포함되며 ; 또한 표권에 날짜를 찍는 기계도 포함한다.

- (4) **주화분류기(coin-sorting machine)**와 **주화계수기(coin-counting machine)**(지폐의 계수기와 지불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화폐나 지폐를 포장하는 장치나 경우에 따라 포장 위에 그 액수를 인쇄하는 장치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

중량에 의한 화폐계수기는 **제8423호**나 **제9016호**에 해당한다.

- (5) **현금 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인지에 상관없다)

- (6) **현금자동입출금기** : 고객이 예금·인출·이체를 하고, 은행원을 직접 통하지 않고,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 (7) **연필깎이**(수동식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비기계식 연필깎이는 **제외하며** ; 이들은 **제8214호**에 분류한다. 만일 이들이 완구의 특성을 갖춘 것이면 **제95류**에 분류한다.

- (8) **천공기** : 종이 카드나 서류에 구멍을 뚫는데 사용한다(예: 루스-리프식 서류철용이나 간단한 색인용이나 분류용).

우표의 시트(sheet)에 천공하는 것처럼 일련의 조그만 구멍을 천공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제8441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 (9) **자동타자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종이 테이프를 천공하는 기계**

- (10) **천공 테이프로 작동되는 기계** : 타자기구는 갖추지 않고 자동적으로 테이프를 하기 위하여 보통의 타자기와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별개의 기계이다. 이 기계 중의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 특정의 문자나 서류에 대응하는 천공 테이프를 선별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 (11) **지철기(stapling machine)**[스테이플(staple)로 서류를 합철하는데 사용한다]와 **스테이플 뽑기(拔引機)**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피스톨형 스테이플러(stapling pistol)(**제8205호**)

(b) 제본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스테이플러(**제8440호**)

(c) 판지상자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스테이플러(**제8441호**)

- (12) **편지 접는 기계** : 때로는 봉투에 편지를 넣거나 그것을 종이밴드(paper band)로 싸는 기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있다.

- (13) **편지개봉기·편지봉합기·실링기(sealing machine)**

- (14) **우표소인기(stamp cancelling machine)**

- (15) **편지분류기(letter sorting machine)** :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코딩 데스크(coding desk), 사전소팅채널(pre-sorting channel) 장치, 중간분류기와 최종분류기의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며, 전체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하는 것으로 제16부의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 구성한다(제16부 총설 참조).

- (16) 포장지나 접착지의 공급기
- (17) 접착지나 우표의 뒷면에 물기를 축여주는 기계(간단한 롤러식의 것을 포함한다)
- (18) 관청에서 기밀문서를 파기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서류절단기(paper shredder)
- (19) 수표작성기(cheque-writing machine) ; 이들 기계는 보통 어떤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된 작은 기계이다. 한자씩 타이핑하는 것 이외에 때로는 어(語)전체나 어(語)군을 동시에 타이프할 수 있는 것이다[예: 어(語)로 금액을 삽입할 때]. 이들 기계는 보통 지워지지 않고 침투성이 좋은 특수한 잉크를 사용하며 때로는 천공이나 올록볼록하게도 한다.
- (20) 수표서명기(cheque-signing machine) ; 이것은 지워지지 않게 자동적으로 수표에 사인을 하는 것으로서 보통 복사하기 어려운 정교한 바탕을 복제하는 것이다.
- (21) 자동잔돈지급기 : 금전등록기에 연결하여 고객에게 자동으로 잔돈을 지급한다.
- (22) 사무실에서 문서나 인쇄물을 분류하고 대조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독립형 기계(stand-alone machine)

위 (19)와 (20)에 언급된 기계는 그 밖의 서류의 파일링(filing)과 서명용으로 또한 사용될 수 있다.

- (23)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 이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작동되는 키보드가 특징인데, 키보드의 키가 눌러지면 상응하는 글자가 직접 종이에 인쇄되도록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잇따른 레버와 해머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글자는 해머의 정면에 부조(浮彫)로 새겨진다; 또 다른 경우에는 글자가 볼(ball), 실린더, 데이지 휠에 옮겨지거나 원통형 부품[셔틀(shuttle)]에 옮겨져서 이들이 요구되는 글자를 종이에 제시하면 다시 그것이 종이에 인쇄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글자의 조합(예: 여러 개의 표준·단어·약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텍스트는 한 글자씩 산출한다.

타자기는 사용하는 글자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분류한다[예: 보통의 문자와 숫자, 속기용 문자, 음표나 브라유(Braille)식 점자]. 코드화나 디코드화용 기계로서 보통의 타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하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전동식 타자기는 전동기로 작동하는지, 전자식(電磁式: electro-magnetic) 릴레이(relay)로 작동하는지, 특정의 자동식 타자기의 경우처럼 전자(電子: electronic) 장치로 작동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들도 포함한다.

- (i) 자동식 타자기.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a) 미리 구멍이 뚫린 종이 밴드를 기계에 통과시킴으로써 대상이 되는 단락이나 글자를 타이핑하도록 하는 기계
 - (b) 제한된 용량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능키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자동으로 기억·교정·재타이핑하는 것이 가능한 기계
 - (c) 교환가능한 타이프휠을 사용하여 한글자씩 인쇄하는 키보드없는 기계(프린터). 이 기계는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다른 타자기, 워드프로세싱 머신,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 접속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류의 주 제6호나목을 전제로 하여, 이 류의 주 제6호라목(i)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는 제8443호의 프린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 (ii) 전기배선용 절연 튜빙(tubing)에 식별 문자를 타이핑하는(때로는 가열된 문자로 소인을 찍기도 하는) 기계.
- (iii) **계산장치는 전혀 내장하지 않았으면서도** 특별히 회계 목적으로 설계된 타자기[예: 인보이스, 가제(加除)식 원장, 일계장이나 파일철 카드].
- (iv) 숫자를 전송하는 장치를 내장하여 별개의 계산기에 타이핑되도록 하는 타자기, 또는 스피드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계산 장치를 내장한 타자기

(24) **워드프로세싱 머신.** 이것은 키보드, 하나 이상의 대용량 메모리(예: 디스크, 미니디스크나 카세트), 시각적 디스플레이 유닛과 프린터로 구성한다. 다양한 구성부품은 단일의 유닛이나 케이블로 연결된 별개의 여러 개의 유닛에 덮어져 있을 수 있다. 워드프로세싱 머신은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예를 들어, 다른 워드프로세싱 머신, 사진식자 장비, 자동자료처리장치나 이동통신시스템과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텍스트를 교정하거나 조판할 수 있는 능력은 자동식 타자기의 그것보다 크다. 계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이류의 주 제6호에 정의된)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못미치며 따라서 워드프로세싱 머신의 성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프로세싱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의 실행을 수정할 논리적 결정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는 차이가 있다.

위 (19)와 (20)에 언급된 기계는 다른 서류에 기입하는(filling in)용도와 서명하는(signing)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8443호**의 기계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당되는 분류기
- (b) 회계기(**제 8470 호**)
- (c) 자동자료처리기계(**제 8471 호**)
- (d) 텔레프린터(**제 8517 호**)
- (e) 딕테이팅기(dictating machine) · 그 밖의 녹음기 · 음성재생기(**제 8519 호**)
- (f) 은행권이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엑스선기기(**제 9022 호**)
- (g) 시간기록기(**제 9106 호**)
- (h) 장난감 타자기(**제 9503 호**)
- (ij) 수동식의 일부인(日付印) · 봉함용 스탬프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스탬프(**제 9611 호**)

84.73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의 것

8473.29 -- 기타

8473.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40 -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50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품이나 장치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타자기, 회계기 등에 용지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용지공급장치
- (2) 타자기, 회계기 등의 스페이스를 두는 자동장치
- (3) 주소인쇄기에 부착하는 리스트장치(listing device)
- (4) 도표용 기계에 사용하는 부속인쇄장치
- (5) 타자기에 부착하는 카피홀더(copy holder)
- (6) 주소인쇄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속으로 만든 주소판(절단되어 있거나 울록볼록하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7) 타자기·회계기·계산기 등에 결합되는 계산장치
- (8) 자동데이터처리기계 등의 디스크 드라이브 세정용 디스켓
- (9) 제85류의 주 제12호나목 2)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요소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복합부품 집적 회로(MCOs)의 정의[제85류의 주 제12호나목 4) 참조]에 일치하지 않으면서 고유기능을 갖지 않은 채 전용되거나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전자기억모듈 [예: SIMMs(단일인라인기억 모듈)과 DIMMs(복수인라인기억모듈)]

다만, 커버·휴대용 케이스와 펠트패드(felt pad)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 이러한 것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또한 사무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가구제품(예: 찬장과 테이블)도 **제외한다(제9403호)**. 다만, **제8470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하는 스탠드로서 보통 기계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8470호·제8471호나 제8472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계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스푼(spool)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감기용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예를 들면, **제3923호나 제15부**에 분류한다)
- (b) 마우스 패드(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 (c) 종이 등사판원지(**제4816호**)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등사판원지(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 (d) 통계용 카드(인쇄된 것)(**제4823호**)
- (e) 자기(磁氣 : magnetic) 디스크팩과 자기(磁氣)식 기록용으로 만들어진 그 밖의 매체물(**제8523호**)
- (f)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 (g) 회전계(예: 타자기에 부착되는 타이프의 속도측정용의 것)(**제9029호**)
- (h) 타자기용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리본[스풀(spool)이나 카트리지(cartridg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쇄를 위해 잉크를 넣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그 물품의 구성 물질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9612호**에 분류한다)
- (ij)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84.74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8474.20 - 파쇄기나 분쇄기

-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8474.32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8474.39 -- 기타

8474.80 - 그 밖의 기계

8474.90 -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 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슬래그 시멘트(slag cement)나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일반적으로 이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이나 반죽]에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
- (II)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의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예: 고체의 광물 연료를 조괴(造塊 : agglomerating)하는 기계 ; 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 등을 성형(결합제나 충전제의 첨가유무에 상관없다)하는 기계]
- (III) 주물용 사형(砂型 : mould of sand)의 성형기(成形機)

이 호의 많은 기계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의 두 가지나 그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예: 수력에 의한 선별과 세척·분쇄와 선별·분쇄와 혼합·혼합과 형입을 하는 기계).

보통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에 사용하는 어떤 기계는 제2차적인 용도로서 비광물성 물품(예: 목재나 뼈)을 처리하는데도 사용하며 ; 이와 같은 기계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비광물성 재료에 대하여 유사한 작업[예: 목편(木片)의 선별이나 체질 ; 목분(木粉)의 분쇄 ; 화공약품이나 유기착색재료의 분쇄나 혼합 ; 뼈·상아(ivory) 등의 분쇄 ; 코르크분의 응집이나 형입]을 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I) 앞에서 설명한 (I)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선별기·기계식 체(screening)·분리기·세정기** : 보통 덩어리나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기계이다. 이러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롤러선별기(roller sorter)** : 서로 상당히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동일 방향으로 회전하는 여러 개의 평행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롤러는 여러 개의 홈을 가지고 있어서, 롤러가 서로 인접하면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데, 재료가 롤러 위로 통과하면서 아주 적은 채널로 빠질 수 있게 된다. 이들 채널은 그 크기가 기계를 따라 점점 커지므로 기계가 이 채널로 빠지면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용기에 모이게 된다.
 - (2) **와이어메시(wire mesh)나 천공판(perforated sheet)을 사용하는 선별기(screening machine)** : 체의 눈(mesh)이나 구멍의 크기가 낮은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체위를 재료가 통과하는 것이다. 이 기계에는 두 가지의 형이 있는데 첫 번째의 형은 와이어 메시(wire mesh)나 다공판(多孔板)이 회전식의 경사 드럼, 즉, 보통 원통형이나 6각형[회전식광석체(trommel)]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다른 하나의 형은 평면의 경사진 메시(mesh) 천공판(perforated sheet)의 체가 기계에 의하여 진동되거나 요동되는 것이다.
 - (3) **갈퀴형 선별기** : 재료는 적당한 간격으로 이(齒 : teeth)가 붙어 있는 일련의 갈퀴(rake)에 의하여 선별한다.
 - (4) 석탄으로부터 돌 등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형의 **특수기계**
 - (5) **물에 의한 세정·분리나 농축을 하는 기계** : 어떤 것은 단순히 불순물을 씻어내고 ; 다른 식의 것은 물에 뜨지 않는 무거운 부분을 분리하거나 농축한다.
 - (6) **부유 선별기(flotation separating machine)** : 주로 광석의 선광(選鑛)에 사용한다. 쇄광(碎鑛)을 물과 특정의 계면활성제(오일이나 여러 가지 화학제품)와 함께 혼합한 것이다. 박막(film)이 어떤 광석입자 위에 형성되며 그 때문에 광석입자는 액면으로 운반되어 제거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혼합물에 공기를 붙어 넣음으로써 그 작용이 촉진된다.

이 호에는 또한 자기장치나 전기장치를 갖춘 선별기나 분리기[예: 정전(靜電)식 선별기]와 전자(電子)식이나 광전(光電)식의 검출장치를 사용한 기계가 포함되며, 예를 들면, 방사능 측정에 의하여 작동되는 우라늄이나 토륨의 선별장치이다.

이 호에는 원심식선별기, 즉, 분리가 비중이 다른 입자를 고속회전을 하는 중심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서 포집(捕集)하는 원심력의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제8421호)**. 다만, 원심력이 와이어스크린(wire screen)에 재료를 던지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한다.

선별이나 체질하는 장치와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밴드(conveyor band)는 선별기나 기계식 체와 일체를 형성하지 않거나 컨베이어 밴드 그 자체가 기계식 체나 선별장치(예: 선별이나 체질하기 위한 구멍이 있는 것)로 **작용하지 않는 한** 특별히 포함된 해당 호에 분류한다.

(B) **파쇄기(crushing machine)나 분쇄기(grinding machine)**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수직형 회전식 파쇄기** : 본질적으로 이 기계는 원추형의 회전체가 그 내부에서 회전(때로는 편심운동을 함께 한다)하는 용기로 형성된다. 재료는 원추 회전체와 용기의 벽 사이에서 파쇄된다.
- (2) **여러 가지 형식의 조오크러셔(jaw crusher)** : 파쇄하여야 할 재료가 2개의 수직된 홈이 파여진 조오(jaw) 사이에 떨어진다. 이때 조오의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3) **드럼식 파쇄기** : 재료를 드럼의 상단(top)에 끌어올린 다음 저부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파쇄된다.
- (4) **롤식의 파쇄기나 분쇄기** : 재료는 반사방향으로 회전되는 평행 롤러의 사이에서 파쇄한다. 롤러 사이의 거리는 요구되는 가늘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기계는 이와 같은 한 조의 롤러가 여러 개 모여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 (5) **충격식 분쇄기** : 재료는 기계의 벽을 향하여 격렬하게[예: 급속히 회전하는 아암(arm)에 의해서] 던져진다.
- (6) **해머형 파쇄기**
- (7) **볼(ball)식 분쇄기나 로드(rod)식 분쇄기** : 주로 많은 볼(ball)이나 짧은 로드(short rod)[예: 강(鋼)으로 만든 것이나 자기로 만든 것]을 넣은 회전드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료를 회전드럼 안에 놓고 볼(ball)이나 로드(rod)의 사용에 의하여 파쇄나 분쇄하는 것이다.
- (8) **밀스톤(millstone)형 분쇄기**
- (9) **드롭해머(drop hammer)식 파쇄기**[스탬프밀(stamp mill)로 알려져 있다] : 주로 광석의 파쇄에 사용한다. 일련의 캠작동식 드롭해머(cam-operated drop hammer)[때로는 눈금이 있는 행정(行程)으로 조절되도록 되어 있다]는 필요한 크기로 재료를 파쇄한다.
- (10) 도자기공업에 있어서 다음 가공을 하기에 앞서 점토의 덩어리를 **분쇄하여 반죽하는 기계**

(C) **혼합기나 반죽기** : 이 기계는 주로 패들(paddle)이나 그 밖의 교반장치를 장비한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용기 내에서 둘 이상의 재료가 휘저어지거나 교반에 의하여 혼합되거나 반죽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mortar) 혼합기** : 다만, 철도 차량이나 화물 자동차의 새시에 영구적으로 장치된 콘크리트 혼합기는 **제외한다(제8604호나 제8705호)**.
- (2) **광물성 물질(파쇄되었거나 깨트려진 돌·자갈·석회석 등)을 역청(bitumen)과 혼합하는 기계** : 이들 기계는 역청(bitumen)질의 도로포장재료의 조제에 사용하며, 이러한 기계들은, 예를 들면, 하나의 공통 새시 위에 장착된 일련의 독립된 기기들[피드 호퍼(feed hopper)· 건조기· 먼지추출기· 혼합기· 엘리베이터 등]로 이루어진 시설의 형태를 갖는 경우도 있거나, 또한 구성기기들이 단순히 차례대로 장치되어 기능단위를 이루는 형태일 경우도 있다(고정식이나 이동식 아스팔트 플랜트).
- (3) **광석혼합기**

- (4) 덩어리진 연료의 제조에 있어 **분탄(粉炭) 등을 결합 물질과 혼합하는 기계**
- (5) **도자기 공업에 사용하는 기계**(예: 점토를 착색재료와 혼합하는 기계나 세라믹페이스트를 반죽하는 기계)
- (6) **주물사(鑄物砂 : foundry sand)의 제조에 사용하는 혼합기**

(II) 조괴기(造塊機 : agglomerating machine) · 형입기(moulding machine) · 성형기(成形機 : shaping machine)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계는 다음 3가지 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 (i) 미리 조제된 재료를 요구되는 모양으로 조괴(造塊)하여 프레스하는 형을 조작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프레스
- (ii) 재료를 요구되는 모양으로 프레스하는 요(凹)이나 형(型)의 일군(一群)을 표면에 부착한 대형실린더(cylinder)

또는 (iii) 추출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고형(固型) 주물성 연료를** 벽돌 · 불(ball) · 알(egg) 등의 모양으로 **조괴(造塊)하는 기계** [분탄 · 피트 파이버(peat fibre) 등]
- (B) **세라믹 페이스트의 조괴기(造塊機)나 성형기(成形機)**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프레스나 압출식의 벽돌 제조기**(압출된 봉에서 벽돌을 절단해내는 기계를 포함한다)
 - (2) **타일(tile) 형입기**(모서리를 깎아 다듬는 기계를 포함한다)
 - (3) **토관(土管)의 형입기나 압출기**
 - (4) **브리카니온 래스(Bricanion lath) 제조기** : 이 기계에 있어서는 와이어메시(wire mesh)가 롤러를 통과하여 횡단할 때에 점토로 피복된다.
 - (5) **도공(陶工)용 녹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 : 세라믹 페이스트가 회전되어 손에 의하여(또는 도구의 도움과 함께) 성형된다.
 - (6) **도자제 의치의 형입기**
- (C)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제조용의 연마제 응결기**
- (D) **여러 가지 콘크리트제의 조립 부분품**[예: 포장석 · 기둥 · 손잡이 · 파일런(pylon)]을 제조하는 기계[**관용(管用)의 원심식 성형기(成形機)**]를 포함한다]
- (E) **여러 가지의 석고, 스테프(staff), 치장 벽 등 제품의 형입기**(예: 완구 · 작은 조각상과 천장 장식품)
- (F) **석면-시멘트 제품**[예: 큰통 · 수조(水槽) · 연돌(煙突 : chimney)]의 **형입기와 심축을 회전시켜 석면-시멘트제의 관(tube · pipe)을 제조하는 기계**

(G) 흑연전극의 형입기

(H) 연필의 압출기

(I) 철판용 백묵의 형입기

(III) 주물용 사형(砂型 : mould of sand)의 성형기(成形機)

이 기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는데 미리 준비된 주물사(foundry sand)를 코어로 성형하기 위한 주형으로 프레스하거나 형을 만들기 위하여 주형틀(moulding box) 내의 모형틀에 프레스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기계는 형 안에서 모래가 견고하게 고착되도록 흔들어 주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압축공기가 피스톤(piston)이나 직접적으로 모래의 표면에 작용하는 많은 형의 것을 포함하며 ; 다만, 모래를 압축공기의 분사에 의하여 취부하는 기계는 **제외한다(제8424호)**. 코어나 형을 건조시키는 스토브(stove)도 **제외한다(제8419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 볼(ball)식 분쇄기용 볼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가루 상태 연료용 버너 ; 메커니컬스토커(mechanical stoker)로서 분쇄장치(pulverising or grinding equipment)를 갖춘 것(제8416호)
- (b)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로울기(rolling machine)(제8420호)
- (c) 필터 프레스(제8421호)
- (d) 돌이나 그 밖의 광물성재료의 가공용 기계나 유리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제8464호)
- (e)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경우에 따라서 제8467호 · 제8479호)
- (f) 유리의 형입기나 프레스기(제8475호)
- (g) 플라스틱 형입기(제8477호)
- (h) 범용(汎用)성의 프레스(제8479호)
- (ij) 콘크리트 스프레더(concrete spreader)(제8479호나 제87류)
- (k) 금속 주물용의 주형틀 ; 이 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주형(mould)(제8480호)

84.75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 8475.1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 8475.21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 8475.29 -- 기타
- 8475.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를 포함한다. 이들은 또한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제8417호나 제8514호의 노(蘆)를 제외한다].

(I)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flash-bulbs)(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전구의 진공 봉지기(封止機)

(B) 백열전구나 무선용밸브를 자동적으로 조립하는 회전식의 기계

이러한 기계는 보통 유리의 열처리 장치[예: 유리구를 봉지(封止)하기 위한 취관(blowpipe)이나 프레스와 봉지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비록 이와 같은 유리가공장치를 갖추지 않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식 필라멘트 전구의 조립용 기계도 포함하며 그 구성 부분은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고, 그 구성부분에는 유리의 열처리용 장치·펌프와 램프 테스트링 유닛(lamp-testing unit)을 포함한다(제16부의 주 제4호 참조).

이 호에는 램프나 밸브 구성부분의 제조에만 전용되는 기계[예: 스크린·양극이나 서포트를 절단하거나 인발(引拔)하는 기계(제8462호)·전기램프 필라멘트의 제조에서 미세한 금속선을 나선 모양으로 감는 기계(제8463호)·스크린·전극을 용접하는 기계(제8468호나 제8515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II)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는 연화(軟化)상태나 용융(鎔融)상태로 가열된 유리(석영유리와 그 밖의 석영유리를 포함한다)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 주로 캐스팅(casting) · 드로잉(drawing) · 롤링(rolling) · 스피닝(spining) · 블로잉(blowing) · 모델링(modelling) · 몰딩(moulding) 등에 의하여 작동한다. 경화(硬化)상태(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가열한 것을 포함한다)로 유리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외한다(제8464호)**.

(A) 평면 유리판의 제조용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플랫스트립(flat strip)을 연신(drawing out)하여 판유리를 제조하는 기계** : 조잡하게 성형된 유리의 판이 특수 장치에 의하여 주워 올려 지며 ; 그리하여 롤러에 끼워진 상태로 소둔로(annealing oven)를 통과할 때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늘려진다. 이러한 공정에서 얻어진 연속된 밴드는 판으로 절단한다(기계적으로나 전열선에 의하여).
- (2) **플로트(float) 유리의 제조기계** : 플로트 공정과정에서 용해 매체에 수평으로 부양(浮揚)하여 끝이 없는 리본을 제조한 후 여러 조각으로 자른다.

(B) 그 밖의 유리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병 제조기계 등** : 개터링(gathering)과 블로잉(blowing)용의 간단한 기기(흡입이나 압축공기에 의하여 조작되고 분리된 형을 사용한다)로부터 자동연속 공급기(두 개의 회전하는 플레이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 개의 플레이트에는 거칠게 주조하는 형이 붙어 있고, 다른 플레이트에는 완성가공용의 형이 붙어 있다)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
- (2) 여러 가지 유리제품[예: 포장용 블록(block) · 타일 · 애자(insulator) · 광학 유리의 블랭크(blank)와 중공(中空)의 유리제품]을 **성형하기 위한 특수한 기계와 프레스** : 다만, 범용(汎用)성의 프레스는 **제외한다(제8479호)**.
- (3) **유리관을 드로잉(drawing) · 셰이핑(shaping)이나 블로잉(blowing)하는 기계와 석영 유리의 관(管)을 드로잉하는 특수기계**
- (4) **유리로 만든 비드(bead)를 제조하는 기계** : 관(tubing) 조각을 세단(細斷)하여 회전하는 가열 드럼 속에서 롤링함으로써 둥글게 만드는 특수한 기계이다.
- (5) **유리섬유의 제조기계** : 이러한 기계는 세 가지의 주요한 범주로 나누어진다.
 - (i) **직물용의 연속된 유리실을 제조하는 기계** : 이 기계는 유리구가 삽입되어 있는 작은 전기로(電氣爐)로 되어 있다. 이 노(爐)의 밑바닥 부분은 다수나 아주 가는 세공을 가진 드로우플레이트(draw-plate)로 구성되어 있고 ; 필라멘트는 이러한 구멍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으며 단사(single strand)를 만들기 위하여 특수 장치에 의하여 합사(合絲)된다. 이 실(糸)은 필라멘트가 연속하여 앞으로 인출되는 작용을 하는 회전드럼에 감겨진다.

- (ii) **단섬유를 제조하는 기계** : 앞에서 설명한 기계와 유사한 전기로(電氣爐)와 드로우 플레이트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 기계는 양측에 압축공기의 제트(jet)를 모으는 세트가 있다. 이러한 제트는 필라멘트의 인출과 절단의 이중의 역할을 행한다. 섬유는 기름 분무를 거쳐서 회전하는 구멍이 뚫린 드럼으로 떨어진다. 드럼 내의 흡인장치는 로빙(roving)이 만들어지도록 섬유를 끌어내어 로빙을 스푼 보빈(spool bobbin)에 감겨지게 한다.
- (iii) **유리워딩(glass wadding)을 제조하는 특수 기계** : 용융(鎔融) 유리는 가열된 회전원판 위에 부어진 다음 ; 원판의 주름에 부착되어서 원심작용에 의하여 섬유로 만들어진다.
- (6) **전구나 전자관 등의 밸브나 그 밖의 유리로 만든 부분품**[예: 베이스블록(block) · 필라멘트 서포르트(filament support) · 스템(stem)]을 제조하는 기계
- (7) **광섬유나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의 기계**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수지형의 글라스 블로워(glass blower)(제8205호)
- (b) 특정의 경화(硬化)유리 제조기계, 즉, 보통의 유리판을 가열된 판의 사이에 놓고 급냉시키는 것(제8419호)
- (c) 수동식이나 기계식의 유리제조용 주형(제8480호)

84.76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 · 담배 · 식품 ·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476.29 -- 기타

- 그 밖의 기계

8476.81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476.89 -- 기타

8476.90 - 부분품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 · 토큰이나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의 기계를 분류한다(다만,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기계나 류주 혹은 부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는 기계 **이외의 것**). 이 호에서 “벤딩(vending)”이란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기계간의 금전적 교환을 의미한다. 이 호에는 물품을 제공하지만 물품대금을 받는 장치가 없는 기계는 **제외한다**.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장치가 없는 자동 온냉음료 배포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이 호에는 배분이 자동적으로 되는 기계뿐 아니라 동전을 삽입한 후에 상품을 꺼내는 많은 구성부품(compartments)로 구성된 것이 있으며, 해당 칸막이의 자물쇠를 여는 장치[예: 해당하는 버튼(button)을 눌러서 여는 것]를 갖춘 기계도 포함한다.

역에서 수하물을 맡기거나 극장에서 오페라 관람용 안경(opera glasses)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코인 작동식의 자물쇠를 붙인 간단한 작업장(cupboard)이나 용기(container)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예를 들면, **제15부나 제94류**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기계의 주된 기능과 용도가 제품의 자동판매에 있는 경우에는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기계나 판매하여야 할 제품을 조제하는 장치(예: 과즙 압착기 · 커피나 밀크의 믹서 · 아이스크림 믹서)를 갖춘 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는 우표 · 철도용 승차권 · 초콜릿 · 과자 · 아이스크림 · 담배 · 음료(맥주 · 포도주 · 리큐르 · 커피나 과즙과 같은 것) · 화장품(향수 뽑는 기계를 포함한다) · 양말 · 사진필름 · 신문 등 판매용의 코인 작동식의 기계를 포함하며 ; 또한 네임플레이트(name plate)를 금속의 스트립으로부터 타발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화폐교환기(money-changing machine)도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점의 프런트(front)에 짜 맞추는 **자동판매기**와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코인작동식의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a) 코인작동식의 자물쇠(예: 식기선반이나 공중변소용의 것)(제8301호)
- (b)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제8413호)
- (c) 중량 측정기(제8423호)
- (d) 타자기(제8472호)
- (e) 코인작동식의 구두닦이기계(제8479호)
- (f) 전기면도기(제8510호)
- (g) 전화기(제8517호)
- (h) 텔레비전수상기(제8528호)
- (ij) 망원경·사진기·영사기(제90류)
- (k) 가스나 전기의 적산용계기(제9028호)
- (l) 게임용구(제9504호)와 제95류의 그 밖의 기계

○
○ ○

[소호해설]

소호 제8476.21호와 제8476.29호

“음료 자동판매기(automatic beverage-vending machine)”란 컵이나 다른 용기[예: 캔·병·카톤(carton) 팩]에 바로 사용하도록 조제된 것이거나 인스턴트 믹스 가루와 더운 물(또는 찬물)로 분리 조제하는 음료(커피·홍차·과일주스·알코올음료 등)를 판매하기 위한 모든 자동 기계를 말한다.

84.77 -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 사출 성형기

8477.20 - 압출기

8477.30 - 취입 성형기

8477.40 - 진공 성형기와 그 밖의 열 성형기

- 그 밖의 성형기

8477.51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477.59 -- 기타

8477.80 - 그 밖의 기계

8477.90 - 부분품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타이어나 그 밖의 제품의 성형기(成形機). 다만, **제6815호** · **제6903호**와 특히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한다**.
- (2) 이너튜브(inner tube)의 밸브구멍 절단기
- (3) 특수한 고무실의 절단기기
- (4) 고무나 플라스틱의 성형 프레스
- (5) 열가소성 가루의 성형용 특수 프레스
- (6) 축음기판 제조용의 프레스
- (7)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제조용의 기계
- (8) 압출기(extruder)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
* *

그러나 이 호는 반도체 조립과정에서 캡슐화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류(machinery for encapsulation)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86호)**.

84.78 -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 - 기계류

8478.90 - 부분품

이 호에는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스트리핑(stripping)은 타작분리기(threshing separator) 속에서 행해진다. 공기의 흐름을 담배잎이 조각조각 부서지게 하는 여러 가지 크기의 회전식 비팅 해머(beating hammer)와 금속격자(metallic grill : basket) 장치에 통과시키면 일부분이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무거운 엽맥(葉脈)과 분리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담배의 잎을 벗기거나 절단하는 기계
- (2) 시가나 켈런 제조기계(보조포장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분류한다.

84.79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8479.10 -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 8479.2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 8479.3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 8479.4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 8479.5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479.60 - 증발식 에어컨
- 탑승교
- 8479.71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 8479.79 -- 기타
- 그 밖의 기기
- 8479.81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 8479.82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
·유화기·교반기
- 8479.83 - 냉간 등압성형기
- 8479.89 -- 기타
- 8479.90 - 부분품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 (i)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 (iii)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한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잡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i)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잡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나 복잡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예: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 ;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s)는 부착될 기계나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야 할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차량용이나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I)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나 그 밖의 용기(예: 전해조)로서 특정 공업용이나 **제8419호**의 가열·조리용 등의 기기가 아닌 것. 탭(tap)·액면계나 압력계나 이와 유사한 것을 간단히 부착한 조(槽)나 그 밖의 용기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
- (3) 작업에 대비하여 가공 대상물을 동일 선으로 연속하여 공급하는 용적식의 분배장치[예: 기계식 호퍼 피드(mechanical hopper feed)]와 기계식 분배기로서 특정 공업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

- (4) 아이렛팅(eyeletting)기나 관(管)상 리벳팅(tubular riveting)기로서 방직용 섬유·판지·플라스틱재료와 가죽과 같은 재료의 어느 것에나 아이렛(eyelet)이나 리벳(rivet)을 타(打)입하는데 적합한 기계 ; 방직용섬유·고무·그 밖의 모든 재료제의 기계용 벨팅의 끝을 스테이플링함으로써 접합시키는데 적합한 기계도 해당한다.
- (5)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紡絲)형의 진동은 모터가 붙어 있는 기계[슈트(chute)·빈(bin)·호퍼(hopper)·컨베이어·간결한 기기 등]에 전달된다.
- (6) 전자(電磁) 진동기 : 이송(conveying)·스크리닝(screening)·압축(compacting) 등을 위한 기기에 사용하며, 전자석을 운반하는 기관과 전자석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있는 2세트의 스프링에 의하여 위치를 잡도록 덩어리(mass)를 지지하는 금속봉으로 구성되며 ; 그 덩어리(mass)는 자석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거나 스프링에 의하여 뒤로 당겨진다.
- (7)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업분야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활동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일반적인 수직형 로봇). 또한, 그들은 수직축으로 움직이는 직선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선형 구조의 홀더는 수평축으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의 중단부분을 형성하고 있다(수평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빔이 장착될 수 있다(빔 로봇).

이들 구조의 서로 다른 부분은 전동기나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의 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취급·적하(積荷)와 양하(囊荷)·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trimming)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며 ; 이들 로봇은 악조건의 환경(유독성 물품, 먼지 등)에서나 힘이 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한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 때문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툴홀더(tool holder)와 툴(tool)을 갖추고 있다[예: 집게·그립퍼(gripper)·용접 헤드].

이 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나 **제8515호**).

(II) 특정산업용의 기계류(machinery for certain industries)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공공작업·공공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예:

(1) 모르타르(mortar)나 콘크리트의 살포용 기계(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조제용 혼합기는 **제외한다**)(제8474호나 제8705호)

(2) 도로공사용 기계로서 도로를 견고히 하고 그 표면을 둥글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진동시키며 때로는 콘크리트를 살포하는 것

다만, 이 호에는 제8429호에 해당하는 레벨러(leveller)는 **포함하지 않는다**.

(3) 도로나 이와 유사한 표면에 자갈을 까는 기계[자주식(自走式)인지에는 상관없다]와 아스팔트질의 도로표면재료를 살포하며 다지는 자주식(自走式)의 기계. 다만, 자동차의 새시에 장치된 자갈 살포기는 **제외한다**(제8705호).

(4)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아스팔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흠을 파거나 체커링(checkering) 등을 하는 기계류

아스팔트 등의 가열기기는 **제외한다**(제8419호).

(5) 도로의 유지용으로 보행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소형의 동력장치[예: 청소기·백선 긋는 기계(white line painter)]

제8701호의 트랙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차량이 붙은 새시 위에 쓰레기 용기와 철수(撒水)장치를 함께 갖춘 기계식 회전비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하더라도 교환장치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6) 화물자동차에 탑재하도록 설계·제작된 제설용 소금과 모래 살포기 : 소금덩어리를 분쇄하고 갈아 뿜는 덩어리 분쇄 교반기(攪拌機 : agitator)를 갖춘 모래와 소금 저장용 탱크와 살포용 디스크를 포함한 수압식 분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계의 다양한 기능은 원격조종에 의하여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작동한다.

(B) 기름·비누나 식용지방의 공업용 기계류. 예:

(1)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나 과실에 사용하는 특정의 분쇄기·파쇄기·밀(mill)이나 프레스(press)

(2) 기계식 교반기를 갖춘 탱크로서 특히 정유용으로 설계된 것

(3) 텔로우(tallow) 세정기

(4) 용융(鎔融) 전에 세포를 파쇄하기 위하여 원료 텔로우를 압연하는 장치

(5) 마가린의 구성 성분을 혼합하는 혼합기

(6) 비누의 절단기나 성형기(成形機)

(C) **목재나 이와 유사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류.** 예:

- (1) 통나무를 서로 맞대어 문지르게 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지게 하는 박피용 드럼
- (2) 목재 섬유·목재 칩·톱밥이나 코르크 더스트(cork dust)의 응결용 특수프레스
- (3) 목재 경화용 프레스
- (4) 가압에 의하여 목재를 침투시키는 기계

(D) 방직섬유사나 금속사, 또는 이 양자를 가공하는 **로프 제조기나 케이블 제조기**[스트랜딩(stranding)기·트위스팅(twisting)기나 케이블링(cabbling)기 등]로서 플렉시블한 전기도체의 권선기를 포함하며 다만, 방직섬유에 사용하는 실 꼬기위한 프레임(twisting-frame)은 **제외한다(제8445호)**.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a) 방직용 섬유의 실·스트링 등을 볼(ball)에 감는 권사기(捲絲機)(제8445호)
- (b) 방직용 섬유의 실·스트링 등의 피니싱(finishing)(광내기·윤내기)용 기계(제8451호)

(E) **금속처리용의 기계류[전선의 코일 와인더(coil-winder)를 포함한다]**. 예:

- (1) 레일·기계부분품 등의 알루미늄-열(alumino-thermic)용접에 사용하는 도가니식 바이 스프레스(vice-press)
- (2) 금속을 문질러 닦아내는 용도나 산(酸)세척용(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의해)의 기계류 [박판압연기용의 산세척기를 포함하되 **제8424호**의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는 **제외한다**]
- (3) 금속제품[예: 너트·볼트나 볼베어링(ball bearings)]의 모래를 떼거나 스케일을 제거하거나 연마하는데 사용하는 회전식 드럼기
- (4) 침지(沈漬)식 주석도금용 장치
- (5) 주철 스크랩의 열단기(裂斷機)
- (6) 전기용 케이블에 적층된 방직용 섬유사·침투시킨 제지 스트립·석면으로 만든 테이프나 그 밖의 절연재료나 보호재료를 감거나 피복하는 특수기계; 다만, **제8447호**에 해당되는 짐핑기계(gimping machine) **제외한다**.
- (7) 전선의 코일 와인더(coil-winder)(예: 전동기용·변압기용이나 유도기용)

(F) **버드나무 가지(osier)·케인(canes)·등(rattans)·밀짚·우드스트립(wood strip)·플라스틱 재료 등을 엮거나 합쳐 꼬는 제농용(製籠用)·지조 세공용(枝條細工用)과 그 밖의 기계류.** 예:

- (1) 광주리 세공용·햄퍼(hamper) 제조용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 기계
- (2) 카보이(carboy)·병 등에 지조세공덮개를 만드는 기계
- (3) 병 보호용의 밀짚 싸개제조용 기계
- (4) 엮은 모자 제조용의 끈 끈과 밴드를 만드는 기계

다만, 목재를 쪼개거나 버드나무가지(osier)의 껍질을 벗기거나 등(藤 : rattan)을 구부러 붙이거나 하는 기계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8465호)**.

(G) **페인트 브러시나 그 밖의 브러시의 제조용 기계류.** 예:

(1) 브러시용의 털·뺏뺏한 털·섬유 등의 조제[트리밍(trimming)이나 성형을 포함한다]용 기계

(2) 소켓·대(mount)나 자루에 털·뺏뺏한 털·섬유 등을 부식(付植)하는 기계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뺏뺏한 털이나 섬유를 열소독하는 기계(제8419호)

(b) 목재·코르크(cork)·뼈(骨)·경질(硬質) 고무(hard rubber)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질(硬質) 재료로 브러시 대(臺)나 브러시 자루를 제조하는 기계(제8465호)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 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2) 엔진의 시동장치(기계식·액압식·압축공기식 등의 것). 그러나, 제8511호의 전기식 장치는 제외한다.

(3) 액압식의 축압기 : 액압식의 기계에 균일한 유속을 주거나 압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 하에서 어떤 양의 물을 예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축압기는 특정한 압력으로 조정된 피스톤(piston)을 수용하는 수직의 펌프식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된다.

(4) 펌프형 자동그리스 주입기

(5) 성냥의 화학 입히는 기계(match-dipping machine)

(6) 통에 타르나 그 밖의 도료를 칠하는 기계류(제8424호의 분사식기기를 제외한다)

(7) 용접봉의 피복기(welding electrode)

(8) 인쇄용 젤라틴 롤러의 청정기나 재(再)도포기

(9) 뒷면에 사진용 감광제를 도포하는 기계(제8486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10) 유리의 산(酸) 처리기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를 제외한다)·소형 수직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제8467호)

(12) 파이프라인이나 그 밖의 플렉시블하지 않은 파이프의 유지용 기계[예: 파이프를 청정시켜서 아스팔트나 그 밖의 보호피복물을 파이프에 도포하기 위하여 유배관(油配管)에 사용하는 소형의 자주식(自走式) 기계 ; 유체(流體)의 흐름에 의하여 파이프의 내부를 진행시켜서 배관의 내부를 청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계]

- (13) 침포실린더(carding cylinder) 위에 침포(card clothing)를 장치하는 기계
- (14) 신발의 로프소울(rope sole)을 제조하는 기계
- (15) 베드용 새의 깃털로부터 먼지를 제거하거나 새의 깃털을 세정하는 기계
- (16) 깃 이불(eiderdown)이나 매트리스를 채워 넣는 기계
- (17) 직물류·종이 등의 기체에 연마제를 도포하는 기계
- (18) 플렉시블한 케이블이나 관(管)[예: 방직용섬유나 금속의 케이블이나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鉛管)]을 감는 기계
- (19) 수초(水草)의 절단기 : 수면 밑에 있고 수평의 큰 낫으로 구성되며 보트에 부착되도록 프레임으로 지지되어 있는 수직축 위에서 이 낫이 회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동식이나 증력구동식의 것이 있다.
- (20) 잠수용 종(diving bell)이나 금속으로 만든 잠수복(diving suit) 등으로서 기계식으로 장비된 것
- (21) 선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이로 안정기(gyroscopic stabiliser) ; 다만,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기[회전나침의(gyro-compass) 등]용과 **제9306호**의 어뢰용의 자이로 장치는 **제외한다**.
- (22) 선박용의 조타장치(steering equipment)와 키장치(rudder equipment) : 다만, 키(舵) 그 자체(보통 **제7325호나 제7326호**)와 **제9014호**의 자동조정장치(자이로자동조정장치)는 **제외한다**.
- (23) 전기식·유압식·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핑기로서 항공기용·선박용과 모든 차량용의 것[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의 것(**제8512호**)은 **제외한다**]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와이퍼용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는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의 장착구와 틀을 붙인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도 포함하며 ; 자동차에 사용하는 윈드스크린와이핑기는 **제외한다(제8512호)**.
- (24) 금속으로 만든 부품과 그 밖의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 ; 이것의 완전한 기기(동일 하우징에 장착된 것인지 별개의 유닛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고주파발생기·하나나 수개의 변환기와 세정될 물품에 사용하는 탱크로 구성된다. 완전한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탱크가 없이 제시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기기에 사용하는 초음파변환기도 포함한다. 반도체 웨이퍼나 평판 디스플레이세정에 전용이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초음파 기기와 초음파 변환기는 **제외한다(제8486호)**.
- (25) 수중취관(水中吹管 : underwater blowpipe) : 보통 특수 점화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둥그스름한 노즐의 링 모양인 출구로 압축공기이나 산소를 추가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불꽃이 탈수 있도록 수중에 공동(cavity)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26) 바위나 콘크리트의 절단용이나 천공용의 기계 : 이것은 산소를 분사하여 철강을 태워서 얻어진 고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한 기기는 보통 아주 간단하고 내열성의 핸들이나 그립(grip)으로 구성되며, 이 핸들과 그립은 밸브를 내장하고 있으며 산소의 공급원과 그 끝은 미리 빨강색 가열되고, 바위나 콘크리트를 녹이는데 충분한 매우 높은 온도가 만들어져 타게 된다.
- (27) 자동 구두닦이(shoe brushing machine)

- (28) 침지(沈漬 : immersion)방법에 의하여 종이컵과 용기에 왁스칠하는 기계
- (29) 공업용의 바닥연마기(floor polisher)
- (30) 증발식 에어쿨러(evaporative air cooler)
- (31)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 이러한 탑승교는 승객과 승무원이 정박 중인 항공기 · 순항선이나 페리보트와 터미널 건물 사이를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탑승교는 일반적으로 원형 천장 조립품 · 둘 이상의 직사각형의 신축성 터널 · 바퀴달린 대차를 갖춘 수직 승강부 · 전면에 위치하는 선실(cabin)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탑승교를 특징한 항공기의 문이나 순항선이나 페리보트의 입구의 적정한 위치에 맞추기 위하여 브리지[즉, 신축성의 통로, 선실(cabin)과 수직 승강부 등]를 수평, 수직과 방사(放射)상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된 전기기계식이나 유압식의 장치를 포함한다. 나아가, 항구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탑승교는 순항선이나 페리보트의 입구까지 확장 연결될 수 있도록 브리지의 전면부에 이동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탑승교는 그 자체로는 권양(捲揚) · 취급 · 적하(積荷)나 양하(揚荷)는 할 수 없다.

카펫 청소용 기기로서 카펫을 그 자리에 두고 카펫에 세정용액을 분사한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호텔 · 모텔 · 병원 · 사무실 · 식당과 학교와 같은 시설(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제8451호**에 분류한다.

이 호는 반도체 조립에서 사용하는 캡슐화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류는 **제외한다(제8486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열거한 것 **이외의** 주형(mould)을 포함한다. 특히 **제8480호**].

**84.8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
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 8480.1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 8480.20 - 주형 베이스
- 8480.30 - 주형 제조용 모형
 -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 8480.41 -- 사출식이나 압축식
- 8480.49 -- 기타
- 8480.50 - 유리 성형용 주형
- 8480.6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 8480.71 -- 사출식이나 압축식
- 8480.79 -- 기타

이 호에는 금속의 주형에 사용하는 주형틀·주형베이스와 주형 제조용 모형을 포함한다. 뒤에 설명하는 특정 종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또한 다음 재료를 블랭크(blank)나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주형(mould)(경첩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프레스나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여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한다.

(I) 금속·금속탄화물

(II) 유리(석영유리를 포함한다)·세라믹 페이스트·시멘트·석고·콘크리트와 같은 광물성 물질

(III) 고무·플라스틱

일반적으로 이 주형의 중요한 기능은 재료를 미리 정해진 형으로 유지시켜서 그 동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주형은 또한 재료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다만, 이 호에서는 제8207호의 스탬핑 다이(stamping die)를 제외한다. 그 이유는 강력한 타격이나 압축에 의해서만 재료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예: 금속의 시트 제품을 스탬핑 하기 위한 다이].

(A) 금속 주조용 주형틀(moulding box)

이것은 보통 주철(cast iron)이나 강(鋼)으로 만든 틀(frame)로서 보통 직사각형(장방형)이나 원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모형(pattern)의 주위에 모래를 눌러 고착시킴으로써 성형되는 사형(砂型: sand mould)을 유지한다.

(B) 주형 베이스(moulding base)

이들은 주형 밑바닥에 놓인 판이다.

(C) 주형 제조용 모형(moulding pattern)

이들에는 주조용의 모형·주조용의 심(core)·심상자·몰딩(moulding)보드·모형판 등 사형(砂型)의 준비에 사용하는 것(일반적으로 목재의 것)

(D)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냉각 주형(다이캐스트)** : 요구되는 제품의 모양을 중공(中空)의 형으로 재현시키는 둘 이상의 조절 가능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금속 케이싱의 모양을 하고 있다.
- (2) **압력 주조용의 주형** : 용융(鎔融) 금속을 가압에 의하여 주조하는 것이다. 보통 대응 면에 요구되는 제품의 형에 해당하는 중공(中空)부를 갖춘 두 개의 보완적인 금속으로 만든 냉각주형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 주형의 절반은 어느 정도까지 용융(鎔融)금속을 압축한다.
- (3) **금속가루 소결(燒結)용의 주형** : 이 형은 가열시켜서 때때로 금속탄화물이나 도자성 가루의 소결(燒結)용으로 사용한다.
- (4) 원심주조기용의 **원통형주형**[예: 주철관·총신(銃身 : gun barrel)의 주조용의 것]

(E) 유리 성형용 주형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유리로 만든 포장석·벽돌이나 부석(敷石)의 성형용 주형과 유리 타일의 성형용 프레스식의 주형**
- (2) 수동식이나 기계식(페달식을 포함한다)의 **병 성형용 주형**[예: 블랭크용 주형과 완성가공용 주형·링(ring)용 주형]
- (3) **중공(中空) 유리제품·유리제 절연용품 등의 성형용 주형**
- (4) **유리공용의 선반으로 사용하는 성형용 주형**
- (5) **렌즈나 안경용 블랭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강(鋼)이나 주철(cast iron)로 만든 주형**

(F)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세라믹페이스트의 성형용 주형**[예: 벽돌용 주형·관(管)이나 그 밖의 도자제품의 성형용 주형·(의치용의 주형을 포함한다)]
- (2) **콘크리트·시멘트·석면시멘트제품의 성형용 주형**[관(管)·조(槽)·포장석·부석(敷石 : paving stone)·연돌의 연출관(煙出管)·손잡이·건축용 장식품·벽·마루나 지붕용 슬라브 등]. 또한 보강이나 철근을 넣어 가압한 콘크리트제의 조립용 건축재를 만드는 주형도 포함한다 [창틀·환천정(丸天井)의 부분품·철도용 받침목 등].

(3)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에 연마재를 넣어 응결하기 위한 주형**

(4) **석고·스태프(staff)나 치장벽토 제품의 성형용 주형**(예: 완구·작은 조각상과 천장 장식품)

(G)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타이어 가황용의 “블래더(bladder)”주형** : 두 개의 조절 가능한 금속으로 만든 냉각 주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형은 증기나 전기로 가열시켜서 그 내부에 공기로 부풀린 링(ring)상의 대(袋)공기대(空氣袋 : air bag)나 열수(熱水)로 부풀린 대(袋)[수대(水袋 : water bag)]를 넣은 것이며, 이 공기대나 수대는 타이어를 형면(型面) 쪽으로 단단히 프레스한다.

(2) **여러 가지 고무제품의 가황성형에 사용하는 주형**

(3) **플라스틱 제품제조용의 주형** : 전기식인지 그 밖의 가열수단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것은 중력·사출(injection)이나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 호에는 또한 **미리 태블릿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주형**도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성형용 가루를 태블릿 모양으로 고체화하기 위하여 냉간(冷間) 공정을 사용한 것이며 만든 각 태블릿은 요구하는 제품으로 최종 성형하기 위한 재료로서 적당한 양(또는 적당한 모양과 용적)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액체 상태의 고무·플라스틱 등에 침지(沈漬)시켜서 소정의 물품(예: 장갑)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형(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만든 주형(**제6815호**)

(c) 여러 가지 도자제의 주형(경우에 따라 **제6903호**나 **제6909호**)

(d) 유리제의 주형(**제7020호**)

(e) 잉곳(ingot)용 주형(**제8454호**)

(f)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에 사용하는 주형(**제8486호**)

(g) 레코드 제조용의 원반과 원판(**제8523호**)

(h)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의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 재료로 만든 주형, 프레스와 그 밖의 기계에 사용하는 주형(기계의 부분품으로 설계제작된 것으로 분류한다)

84.81 -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 8481.10 - 감압밸브
- 8481.2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 8481.30 - 체크(논리턴)밸브
- 8481.40 - 안전밸브
- 8481.80 - 그 밖의 기기
- 8481.90 - 부분품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이와 같은 기구나 장치를 갖춘 탭(tap)·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은 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더블리이프(double-leaf)·캡슐·벌브 등]를 갖춘 밸브에 적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모세관식의 자동온도조절 소자를 접속시킨 밸브 등도 포함한다.

탭(tap)·밸브 등과 서모스탯(thermostat)·매노우스타트(manostat)·그 밖의 제9026호나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검정용이나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탭·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제9026호**[예: 배출 콕(drain cock)을 갖춘 액체형 압력계]나 **제9032호**에 분류한다.

원격제어장치의 경우에는 탭(tap)·밸브 등만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탭·밸브 등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비경화가황고무·도자제나 유리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도 이 호에 포함한다.

탭(tap)·밸브 등은 그 밖의 부수적 특성[예: 가열이나 냉각을 위한 이중벽; 연결용의 짧은 관(tubing); 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tube ending); 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 잠금 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탭(tap)·코크(cock)·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 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이나 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제8412호)·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용의 흡입이나 압력밸브(제8414호)·착유기용의 맥동기(제8434호)와 비자동식의 그리스용 니플(nipple)(제8487호) 등이 있다.

*
*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감압밸브(pressure-reducing valve)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 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diaphragm)·벨로우(bellow)·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나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 실린더(cylinder)나 내압용기나 기기의 공급 배관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나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나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나 그 밖의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나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한다.

압력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감압밸브는 그 결합물품이 탭·밸브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호나 제9026호에 해당한다(이 해설의 4번째 문단 참조).

- (2)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 류의 소호주 제3호 참조) : 여러 형태[감압형·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가압된 유체(액체나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체동력(fluid power)”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 (3) 논리턴(nonreturn)밸브[예: 스윙형 체크밸브(swing check valve)와 볼(ball)형 밸브]
- (4)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 등)(경고음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파열 원판(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얇은 원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대신에 안전장치로서 사용한다. 이 원판은 파이프장치나 압력용기에 특수한 지지구로 부착되어서 특정한 압력으로 될 때에 파열한다. 이러한 원판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26호, 제7115호, 제7326호, 제7419호, 제7508호, 제7616호 등).
- (5) 분기밸브[예: 3방향 밸브와 “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 밸브]
- (6) 액면계용의 제어밸브·취출(吹出)밸브와 차단밸브
- (7) 라디에이터의 배수용 탭(radiator drainage tap)
- (8) 이너튜브 밸브(inner-tube valve)
- (9) 플로우트(float)식 제어밸브(float controlled valve)
- (10) 증기트랩(steam trap) : 증기배관으로부터 응축수를 포집(捕集)하여 자동적으로 배수하는 것이다(예: 플로우트의 작용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플러그나 스톱퍼(stopper)가 트랩(자동온도조절 제어식의 증기트랩)의 내부에 장착된 자동온도조절 소자[더블리프식(double-leaf)이나 캡슐식]에 의하여 작동되는 증기트랩도 포함한다.

- (11) 소화전[fire-hydrant : 스탠드파이프(stand pipe)] · 소화 코크(fire cock) · 소화호스용의 노즐(nozzle)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분무를 발생시키도록 콕이나 밸브를 부착시킨 것
소화설비용의 기계식 스프링쿨러헤드 · 기계식의 정원용 스프링쿨러헤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8424호)**.
- (12) 혼합실과 둘 이상의 입구를 갖춘 혼합용의 탭이나 밸브 : 이 호에는 조절 가능한 강력식의 자동온도조절 소자를 갖춘 온도제어식의 혼합용 밸브도 포함한다. 이 경우 자동온도조절 소자는 서로 다른 온도의 유체가 혼합물로 유입하는 것을 조정하는 플러그나 스톱퍼를 작용시킨다.
- (13) 플러그를 갖춘 배설구(**다만**, 손으로 삽입하는 플러그를 갖춘 간단한 배설구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14) 선박용의 배 바닥(船底) 코크나 그 밖의 수중밸브 · 수중 코크 등
- (15) 기선 등의 축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유연한 관이나 신축이 가능한 관(flexible or telescopic tube)을 갖춘 윤활유용의 탭
- (16) 소다수병 용의 밸브
- (17) 압력 스프레이캔 뚜껑 :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의 살충제 · 살균제 등을 압력 하에서 캔에 충전되도록 하는데 사용하며, 이것은 분출구멍을 개폐하는 침(needle)을 변위시키는 프레스버튼이 붙은 금속 헤드로 구성된다.
- (18) 통(casks · barrel) 등의 마개구멍(bung hole)에 부착되는 탭(tap)이나 콕(cock)
- (19) 액면이 병의 상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설계된 자동충전기용의 탭
- (20) 기체작동방식의 맥주 공급장치 : 술집(bar)의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맥주 통으로 배관된 이산화탄소의 압력에 의하여 맥주를 공급하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동식 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탭(tap) · 콕(cock) · 밸브(valve)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경화 가황고무로 만든 것(**제4016호**) · 도자제의 것(**제6903호**나 **제6909호**)이나 유리제의 것(**제7017호**와 **제7020호**)
- (b) 수채 · 변소 · 목욕탕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곳에 사용하는 폐수용의 U자형 밴드와 수세식 변기물통(부착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들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22호** · **제6910호** · **제7324호**)
- (c) 증기기관용의 원심조속기(遠心調速機)(**제8412호**)
- (d) 증기에 의하는 인젝터 펌프(injector pump)와 이젝터 펌프(ejector pump)(**제8413호**)
- (e) 공기식 분무기(**제8424호**)
- (f) 공압식의 그리스건(grease gun)(**제8467호**)
- (g) 가스용접용의 취관(吹管)(**제8468호**)
- (h) 아이스크림 · 주류 · 밀크 등을 분배하기 위한 계량장치를 갖춘 탭(**제8479호**)

84.82 -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 볼베어링(ball bearing)

8482.2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482.3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4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5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8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부분품

8482.91 -- 볼 · 니들 · 롤러

8482.99 -- 기타

이 호에는 볼(ball) · 롤러(roller) · 니들 롤러(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축이나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 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 축 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쓰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 설계하였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보통 베어링은 볼(ball)이나 롤러(roller)를 넣은 두 개의 동심 링(레이스)과 볼이나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볼베어링(ball bearing)** : 볼(ball)이 단열(單列 : single row)이나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 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

(1) 구리로 만든 속 링과 강(鋼)으로 만든 바깥 링에는 6개의 홈이 세로로 정돈되어 있고, 그 홈 속은 늘어뜨린 타원 모양으로 소형의 스틸 볼(steel ball)이 내장되어 있다.

(2) 굴림제한(restricted-travel)형의 것 :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 홈이 파진 원통 · 볼(ball) 케이지와 하우징으로 구성된다.

(3) 굴림자유(free-travelling)형의 것 :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 세그먼트(segment) · 베어링볼(ball)이 내장된 케이싱과 단면이 삼각형의 홈을 갖는 가이드레일(guide rail)로 구성된다.

(B)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여러 가지 형태(원통 · 원추 · 배럴 모양 등)의 롤러가 단열(單列)이나 복열로 되어 있다.

(C) **니들 롤러베어링(needle roller bearing)** : 이것은 균일한 직경이 5mm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베어링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과는 다르다. 롤러의 양 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이 류 소호 주 제4호 참조). 이들 롤러는 베어링의 양 링 사이에 부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케이지(cage)는 사용하지 않는다.

베어링은 그들이 받는 고압 때문에 어떤 특수 용도의 것은 청동 · 구리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보통은 강(鋼)으로 만든 것(특히 크로뮴강)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이 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과 니들 롤러베어링(needle roller bearing)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예:

- (1) **연마된 강구(polished steel ball)**(이 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에 상관없다) : 최대 직경과 최소 직경의 공칭(公稱) 직경과의 차이가 1%나 0.05mm 중 작은 것의 이하인 것 ;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않는** 강구(鋼球)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 (2) 구리·청동·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베어링볼**
- (3) 여러 가지 형의 **베어링용의 니들(needle)이나 롤러(roller)**
- (4) **링(ring)·케이지(cage)·고정슬리브(fixing sleeve) 등**

*
* *

볼베어링(ball bearing)·롤러베어링(roller bearing)·니들 롤러베어링(needle roller bearing)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부분품은 **제외하며** ; 이들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예:

- (a) 베어링하우징과 베어링브래킷(bearing bracket)(**제8483호**)
- (b) 자전거의 허브(hub)(**제8714호**)

84.83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 8483.10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8483.2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483.3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8483.4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 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8483.50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 8483.6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 8483.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i)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 (ii)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
- (2) **중간축(counter shaft)** : 벨트와 톱니(cog) 등에 의하여 주축에 연결하며 ; 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나 기계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한다.
- (3) **연결축(articulated shaft)** : 볼(ball)과 소켓(socket) 연결구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둘 이상의 축으로 되어 있다.
- (4) **플렉시블 샤프트(flexible shaft)** : 구동장치의 운동을, 예를 들면, 수공구(hand tool)·계측기기(적산회전계·속도계 등)에 전달하는 것
- (5) **크랭크(crank)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 : 일체로 만들어졌거나 수개의 부분으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왕복운동[예: 피스톤(piston)식 기관으로부터]을 받아서 그 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거나 그 반대로 변환을 시킨다.
- (6) **캠샤프트(cam shaft)와 편심축(eccentric shaft)**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휠이나 그 밖의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똑같은 단면을 갖춘 철강의 봉(제7214호나 제7215호)
- (b) 플렉시블 구동축 제조용의 연결 장치(coupling attachment)를 갖추지 않은 길이가 단순한 연선(제7312호)
- (c) 잔디 깎는 기계나 풀 베는 기계의 커터바(cutter bar)에 동력을 전달하는 진동식 연결봉(連接棒 : connecting rod)(제8433호)

(B)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은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 · 볼(ball) · 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을 끼워 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frame)이나 블록(block)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베어링에 급유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

또한 때로는 기계에 고정시키거나 건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고정시키기 위한 판금(plate) · 수금(受金)(chair) · 브래킷(bracket) 등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결합되지 않은(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 수금 · 판금 · 브래킷 등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7325호와 제7326호)**.

볼(ball) · 롤러(roller)나 니들롤러(needle roller)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은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볼 · 롤러나 니들 롤러의 베어링이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8482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예: 소결(燒結)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쥘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나 흑연으로 만든 베어링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제6815호)**.

(C)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마찰기어와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 · 실린더(cylinder) · 콘(cone) · 랙(rack)이나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나 보다 고속이나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과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랙과 피니언(rack and pinion)에 의하여].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 · 베벨기어(bevel gear) · 원추형 기어 · 나선형 기어 · 웜(worm) · 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 · 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마찰기어(friction gear)**도 포함한다. 이에는 휠·디스크나 실린더(cylinder)가 있으며 하나를 구동축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를 피(被)구동축에 장착하였을 때에 양자 간의 마찰에 의하여 운동이 전달한다. 이러한 것은 보통 철강으로 만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마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죽·목재·부직포나 그 밖의 재료로 피복된 것도 있다.

(D) 볼 스크루(ball screw)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볼 스크루(ball screw)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이나 롤러를 갖춘 나선 모양의 축과 너트로 구성되며 ; 이러한 장치는 회전 운동을 선(線)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E) 기어박스과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이나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1) **기어박스** : 선택 가능한 배열로 기어(gear)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조립품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기어(gear)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 (2) **마찰 원판식이나 마찰원추식의 연결구와 체인이나 드라이빙 벨트** : 원판·원추·체인이나 벨트는 마찰휠과 접촉되어 있으며 원판의 중심이나 원추의 양단에 관계되는 마찰휠과 위치를 자동적으로(또는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달되는 회전속도가 제어한다.
- (3) **변속유체연결구[액압식 토크 컨버터(hydraulic 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변이(變異)는 피구동소자의 고정익(固定翼 : fixed vane)이나 가동익(可動翼 : movable vane)에 대하여 유체(보통 기름) 속에 있는 구동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얻어진다. 동력은 압력(유체정역학적 변환기)이나 용제[하이드로 다이나믹 변환기(hydrodynamic changer)나 토크 컨버터(torque converter)]에 의하여 전달한다.

이 호에는 모터(motor)와 결합된 기어박스나 그 밖의 변속기는 **포함하지 않고** ; 이러한 것은 모터(motor)와 똑같은 호에 분류한다.

(F) 플라이휠(flywheel)

이것은 비교적 크고 무거운 휠로서 보통 그 중량이 림(rim) 가까이에 집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회전될 때의 휠의 관성은 원동기의 속도 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경우에 따라 플라이휠에는 일정한 상황 하에 있어 풀리(pulley)나 기어의 휠(cog wheel)과 같이 동력의 전달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홈이나 톱니가 있는 림(rim)이 갖추어져 있거나 연결봉(connecting-rod)이 부착되어 있다.

(G)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풀리(pulley)는 연결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 벨트나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pulley)·드럼(drum : wide pulley)·원추형 풀리(conical pulley)·계단식 풀리(stepped pulley)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용 등의 **풀리블록(pulley block)**과 프리풀리(free pulley)도 포함한다. 프리풀리(free pulley)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나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이나 방향 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구동벨트의 강력조정에 사용하는 아이들러 휠·조커 휠).

다만, 둘 이상의 풀리블록(pulley block)의 조립품[즉, 호이스트(hoist)]은 **제외한다(제8425호)**.

(H) 클러치(clutch)

이것은 수시로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차단시키는데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마찰면을 갖춘 회전식 디스크(disc)·링(ring)·콘(con) 등을 접합시키거나 유리시키는 마찰 클러치 ; 대응하는 철출부(凸出部)와 이에 상당하는 길고 가는 홈(slot)을 갖추고 있는 맞물리는 클러치 ; 회전속도에 따라 접합시키거나 유리시키는 자동원심 클러치 ; 압축공기 클러치 ; 액체 클러치 등.

다만, 전자식(電磁式)의 클러치는 **제외한다(제8505호)**.

(I)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슬리브 연결구(sleeve coupling)·플랜지 연결구(flange coupling)·플렉시블 연결구(flexible coupling)·하이드로릭 연결구(hydraulic coupling)·유니버설 연결구(universal coupling)[예: 카르단 조인트(Cardan joint)와 올드햄(Oldham) 연결구]를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단조(鍛造 : forging)에 의한 **제7207호**의 조단조품(粗鍛造品)
- (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差動)기어(differential)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이나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나 캠샤프트(cam shaft)는 자동차의 기관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한다 ; 다만,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과 차동기어는 **제8708호**에 분류한다.
더욱이 이 호에 열거된 형의 전동장치(transmission equipment)는 선박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c) 시계의 부분품(**제9114호**)

84.84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8484.2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90 - 기타

(A)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한다.

- (i) 석면[또는 때때로 펠트(felt)·판지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재료]의 심(core)을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끼운 것, 또는
- (ii) 석면이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 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 그 외연부(外緣部)와 개스킷(gasket)이나 조인트(joint)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 또는
- (iii)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금속박을 적층하여 압축시킨 것

이러한 것은 주로 어떤 종류의 전동기 혹은 펌프나 특정한 관(管) 접합에 사용한다.

다만, 금속 선이나 금속 거즈로 보강된 석면으로 만든 개스킷(gasket)이나 조인트(joint)는 이 호의 (B)항에 해당되는 세트로 하거나 짜 맞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6812호)**.

(B)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

어떤 재료(응결 코르크·가죽·고무·방직용 섬유·판지·석면 등)의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이나 조인트(joint)가 모두 동일 재료제의 것이 **아니며** 또한 작은 주머니, 봉투, 박스 등에 포장을 한 것일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세트에 하였거나 소포장한 것을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어도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든 두 개의 개스킷이나 조인트(joint)가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전부 판지로 만든 5개의 개스킷을 소포장하였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포장에 넣은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4823호**에 분류한다. 다만, 앞에서 설명된 세트(set)로 된 것에 고무로 만든 개스킷(gasket)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해당한다.

(C)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예: 슬라이딩 링 실(sliding-ring seal)과 스프링 링 실(spring-ring seal)] : 기계에 장착되어 진동이나 동작부분에 의해 받는 압력을 견디며, 고압의 누출 방지를 위해 평면과 회전면 사이에서 누출 방지용 조인트(joint)로 작용하는 기계적 조립품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실(seal)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 이 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i) 고정부품(fixed part) : 실이 장착되면 기계에 일체 구성품이 되는 것
- (ii) 가동부품(movable part) : 회전소자, 스프링 소자 등

특히 이 가동부품으로 인하여 이를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이라고 부른다.

이 실은 진동방지장치, 베어링, 실질적 실의 역할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적합관(union)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실은 펌프, 압축기, 믹서, 교반기, 터빈 등에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 실은 여러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금속의 판이나 박(箔 : foil)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에 개스킷(gasket)이나 조인트(joint)로서 앞에서 설명한 (B)에서 설명한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기계용의 패킹(packings)[예: 석면 끈(cord)로 만든 것 **제6812호**]
- (c) **제8487호**의 오일 실 링(oil seal ring)

84.85 - 적층제조기계

- 8485.10 - 금속용
- 8485.20 - 플라스틱 · 고무용
- 8485.30 - 플라스터 · 시멘트 · 세라믹 · 유리용
- 8485.80 - 기타
- 8485.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분류하는데, 적층 제조는 디지털 모델(digital model)을 바탕으로 물리적 대상물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이 기계는 기계에 제공되는 디자인 파일(design file)을 기초로 하여 재료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대상을 창출한다. 이 기계는 에너지 원(source)[예: 레이저, 저항기(resistor), 전자 빔(electron beam)이나 자외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금속,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터, 시멘트, 세라믹, 유리, 나무, 종이나 종자 셀(seed cell)과 같은 재료로부터 3차원의 목적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기계의 형태나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이러한 양식으로 의료 장치, 인공장기(prosthetics), 예술품, 화기(firearm), 건축물과 그 부분품, 의복과 부분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목적물을 창출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양한 형태의 적층제조기계를 분류한다. 예:

- (1) 접착재 분사 방식 기계(binder jetting machine) :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분말과 액체 접착재를 사용하는 기계이다. 분말(예: 금속, 플라스틱, 고무나 유리)은 층을 형성하면서 칠해지는데 각 층에는 분말을 함께 접착하기 위한 액체 접착재가 첨가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층들은 목적물을 형성하도록 단단해지고 결합되어지며, 그 다음에는 세척되고 경화(硬化)되어진다.
- (2) 광경화조형기(光硬化造形機)(stereolithography machine) : 액체 재료[예: 광 폴리머 수지(photopolymer resin)나 플라스틱]을 적층한다. 자외선 레이저는 플라스틱의 첫번째 층을 조사(照射 : scan)하고 경화(硬化)시키며 그 후에 플랫폼(platform)이 올라와서 플라스틱의 연속적인 층이 경화(硬化)된다.
- (3) 재료 분사 방식 기계(material jetting machine) : 플라스틱[예: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스티렌(PS),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카보네이트(PC),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내(耐)고충격성 폴리스티렌(HIPS)이나 환경적으로 분해가능한 플라스틱(Environmentally Degradable Plastic : ED)]을 적층한다. 재료를 노즐(nozzle)에서 똑똑 떨어지게 하면 그 후에 자외선으로 경화(硬化)시킨다.
- (4) 재료 압출방식 기계(material extrusion machine) :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압출 노즐(extrusion nozzle) 안에서 필라멘트를 가열하고, 녹여진 재료를 적층한 후 경화(硬化)시킨다.
- (5) 분말 베드 용해방식 기계(powder bed fusion machine) : 레이저 스캔(laser scan)이나 전자 빔(electron beam)을 사용하여 목적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분말인 재료를 층별로 녹인다.
- (6) 판재적층 방식의 기계로서 시트(보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를 적층하고, 구체적인 3차원의 목적물을 생성하기 위해 디지털 모델에 따라 그 층들을 함께 융합하는 것 : 이것은 2개 이상의 시트를 함께 접착하여 복합 재료를 형성하는 시트 적층기(sheet laminating machine)와는 차이가 있다.
- (7) 직접식 에너지 적층 기계(directed energy deposition machine) : 전자 빔(electron beam)을 사용하여 재료가 적층되는 동안 재료를 녹여서 목적물을 형성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제16부 총설 참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함께 분류한다.(재료를 포함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특정한 3D 프린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제한된 프린터 카트리지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 부품이나기계적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84.86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2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40 -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8486.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 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장치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

(A)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 (1) 대상용융(帶狀溶融 : zone melting)과 실리콘 붕 정제를 위한 **1회 용융(鎔融)용 로(爐)**, 웨이퍼(wafer) 표면 산화를 위한 산화로(爐)와 웨이퍼(wafer)에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확산로(爐)
- (2) **결정 성장기나 결정 인상장치(puller)** : 얇게 절단되어진 웨이퍼(wafer)나 고순도 단결정 반도체 보울(boule)을 생산하는 기계
- (3) **결정 연마기** : 웨이퍼(wafer)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직경으로 단결정 보울(boule)을 연마하거나 단결정에서 요구되는 전기전도 형태와 저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울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계
- (4) **웨이퍼(wafer)를 얇게 절단하는 톱기계(wafer slicing saw)** : 단결정(monocrystalline) 반도체 재료인 보울(boule)을 웨이퍼로 얇게 절단하는 기계
- (5) 반도체 웨이퍼(wafer)를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웨이퍼 연마기(wafer grinder), 래퍼(lapper), 광택기(polisher)** : 여기에는 웨이퍼의 치수를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표면의 편평도는 매우 중요하다.
- (6) **화학적 · 기계적 광택기(CMP : chemical mechanical polisher)** : 화학적인 제거와 기계적인 버핑(buffing) 연마가 같이 수행되어 웨이퍼(wafer)의 평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는 기계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 (1) **막 형성 장비(film formation equipment)** : 이 장비는 웨이퍼(wafer) 가공 공정에서 웨이퍼(wafer) 표면에 여러 가지 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막은 완성된 디바이스 상에서 도체, 절연체와 반도체 역할을 한다. 이들 막은 표면, 금속과 에피택시 층(epitaxial layer)의 산화물과 질화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 예시한 공정과 장비들은 특정 타입의 막만을 생성하도록 제한된 것은 아니다.
 - (a) **산화로(爐)** : 웨이퍼(wafer) 위에 산화 막을 형성한다. 이 산화물(酸化物)은 인가된 산소와 증기로 웨이퍼(wafer) 최상층 분자 층에 화학반응으로 형성된다.
 - (b) **화학기상증착(CVD : Chem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 이 장비는 높은 온도의 반응 챔버(chamber) 내에서 적절한 가스와 결합하여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필름을 증착시키는 장치이다. 이 반응은 열화학적 기상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반응 작용은 상압(atmospheric pressure)이나 저압상태(LPCVD)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플라즈마(plasma) 화학증착(PECVD)을 이용할 수도 있다.
 - (c) **물리기상증착(PVD : Phys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 어떠한 고체를 기화시킴으로써 얻는 다양한 형태의 막을 증착시킨다. 예를 들면,
 - (1) **증발증착장비** : 원료물질이 가열되어 막을 생성한다.
 - (2) **증착(sputtering) 장비** : 이온이 있는 원료물질을 포격함으로써 막을 생성한다.
 - (d) **분자선 결정 성장(MBE : Molecular Beam Epitaxy) 장비** : 이 장비는 초고진공 상태에서 가열된 단결정 기판 상에 분자의 빔을 이용하여 에피택시 층(epitaxial layer)을 성장시킨다. 이 공정은 물리기상증착 공정과 유사하다.
- (2) **도핑(doping) 장비** : 반도체 층의 전도성이나 그 밖의 특성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웨이퍼 표면에 불순물을 주입시키는 장치. 예를 들면,
 - (a) **열 확산 장비(thermal diffusion equipment)** : 장비 내에서 고온 하에서 반응 가스에 의해 웨이퍼(wafer) 표면에 불순물을 주입시킨다.
 - (b) **이온주입기(Ion Implantation)** : 가속된 이온빔의 형태로 웨이퍼(wafer) 표면의 단결정 격자구조 내로 불순물을 이동시킨다.
 - (c) **소둔(燒鈍)로** : 이온주입에 의해서 손상된 웨이퍼(wafer)의 단결정 격자 구조를 수리한다.

- (3) **식각(etching)과 스트리핑(striping) 감광액 박리장비** : 웨이퍼 표면을 식각하거나 세척한다. 예를 들면,
- (a) **습식 식각 장비(wet etching equipment)** : 장비 내에서 분사나 침적 방식에 의해 화학 식각 물질을 반응시킨다. 스프레이 식각기는 한 번에 웨이퍼 하나씩 처리하기 때문에 수조방식의 식각기에 비해 보다 균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 (b) **건식 플라즈마 식각(dry plasma etching)** : 플라즈마(plasma) 에너지 대역에 가스와 함께 원료 물질이 제공되어 이방성 식각형태를 띄게 된다. 건식 식각기(dry-etcher)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체플라즈마(plasma)를 생성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박막 재료를 제거한다.
 - (c) **이온 빔 밀링 장비(ion beam milling equipment)** : 장비 내에서 이온화된 가스 원자가 웨이퍼(wafer) 표면을 향해 가속되어진다. 이 충돌의 결과로 최상층이 표면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제거된다.
 - (d) **잔류 감광액 박리기(stripper)나 굳어진 감광액 박리기(asher)** : 식각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이 기기는 웨이퍼(wafer) 표면의 감광액이 도포장치인 스텐실(stencil)의 역할을 다 한 후, 웨이퍼(wafer) 표면으로부터 사용한 감광액을 제거한다. 이 장비는 또한 질화물, 산화물과 다중 실리콘 등을 등방성(等方性) 식각 형태로 제거한다.
- (4) **석판인쇄 장비(lithography equipment)** : 감광액이 도포된 반도체 웨이퍼(wafer) 표면에 회로모형을 전사하는 기계로 예를 들면,
- (a) **웨이퍼(wafer)에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도포하는 장비** : 이 장비에는 액상의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wafer) 표면 전체에 균일하게 포토레지스트를 회전방식으로 도포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 (b) **웨이퍼(wafer)에 도포된 포토레지스트에 회로모형을 노광하는 장비(또는 그 부분품)**
 - (i) **마스크(mask)나 레티클(reticle)을 사용하여 감광액을 빛(보통 자외선)이나 예를 들면, 엑스레이 등에 노출시키는 장비**
 - (a) **밀착인화기(contact printer)** : 노광(露光)하는 동안 마스크나 레티클(reticle)은 웨이퍼(wafer)에 접촉한다.
 - (b) **근접형 정렬기(proximity aligner)** : 마스크나 레티클(reticle)과 웨이퍼(wafer) 사이에 실제적인 밀착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밀착인화기와 유사하다.
 - (c) **스캐닝 정렬기(scanning aligner)** :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어 움직이는 슬릿 slit이 마스크와 웨이퍼(wafer)를 교차하여 노광하기 위하여 투사(projection) 기술을 사용한다.
 - (d) **스텝 앤드 리피트 얼라이너(step and repeat aligner)** : 한 번에 하나씩 해당 웨이퍼의 한 부분을 노광하는 투사기술을 사용한다. 마스크에서 웨이퍼(wafer)에 작은 형태로 복사하는 과정(축사, 縮寫)에서 노광(露光)되거나, 동일한 크기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노광될 수 있다.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를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 (ii) **웨이퍼(wafer)에 직접 그리는 장비** : 이 장비는 마스크나 레티클(reticle) 없이 조작한다. 이들 기기는 감광액이 도포된 웨이퍼(wafer) 상에 직접 회로 모형을 그리는 “라이팅 빔(writing beam)”[전자빔(E-빔), 이온빔이나 레이저 빔과 같은]을 제어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사용한다.

(5) **노광(露光)된 웨이퍼(wafer)를 현상하는 장비** : 이 장비는 사진 작업실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화학용 수조(bath)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i) 감광액으로 웨이퍼(wafer)나 절연 기판에 회전방식으로 도포하는 **원심 분리기**
- (ii) 절연기판 위에 식각방지용 잉크를 프린팅하는 **스크린 프린터(screen printer)**
- (iii) 웨이퍼(wafer)를 칩으로 분할하는[절단하는(dicing)]데 사용하는 **레이저로 선을 긋는 기기**
- (iv) **웨이퍼(wafer) 절단용(dicing) 톱기계**

(C)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평판으로 기판(基板 : substrate)을 제조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유리 제조용 기기나 인쇄회로나 평판 상에 그 밖의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그룹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 (1) 식각(etching) · 현상(developing) · 잔류감광액 스트리핑 · 세척용의 기기
- (2) 회로모형을 투사하거나, 그리거나 도금하는데 사용하는 기기
- (3) 원심 회전방식으로 건조하는 기기와 그 밖의 건조용 기기
- (4) 사진용 감광유제(photographic emulsion)를 도포하기 위한 기계[스피너(spinner)]
- (5) 도핑(doping)용 이온 주입기(ion implanter)
- (6) 노(爐), 오븐과 그 밖의 확산, 산화, 담금질과 급속가열용의 장비
- (7) 화학기상증착기(CVD)와 물리기상증착기(PVD)
- (8) 연마기와 광택기
- (9) 절단, 금을 긋거나 직선의 홈을 파내는 기계

(D)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 (1) **마스크(mask)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용이나 수리용의 기계**[예를 들면, 사진식의 포토 마스크 제조용 기기(포토플로터(photoplotter)), 마스크와 레티클 수리를 위한 이온 밀링기(ion milling machine) 등]
- (2) **반도체 디바이스나 집적회로 조립용 기기**, 예를 들면,
 - (a) **레이저 조각기** : 완성된 모놀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나 개별 반도체 부품의 플라스틱 케이싱을 조각한다.
 - (b) **프레스(press) 등 캡슐화(encapsulation) 장비** : 칩 주변의 플라스틱 물질을 압착하여 칩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케이스로 만든다.
 - (c) **와이어 본더(wire bonder)** : 초음파나 전기적인 압력 용접 방식으로 모놀리식 집적회로의 접점에 금선(gold wire)으로 용접하는 기기
 - (d) **웨이퍼 뱀핑(wafer bumping)기기** : 다이 형태로 절단하기 이전에 전체 웨이퍼(wafer) 위에 접속단자를 형성한다.
- (3) **보울,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양하(楊荷)와 적하(積荷)용의 기기**(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취급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 하역기 등)

(E)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

84.87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8487.90 - 기타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

- (a) 특정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제17부·제90류** 등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고 따라서 해당 기계와 동일한 호(부분품에 관하여 단독의 호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독의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
- (b) **제8481호**부터 **제848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품
-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제16부의 주 제1호 혹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부분품. 예를 들면,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belts)나 벨팅(belting)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 ;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과 그 밖의 고무로 만든 부분품(**제4016호**) ;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부분품(**제4205호**) ;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제5910호**)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기계 부분품(**제5911호**) ; 도자제나 유리로 만든 부분품(**제69류나 제70류**) ; 천연이나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半)귀석만으로 제조된 기계 부분품(**제71류**) ;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스크루(screw)·체인(chain)·스프링(spring)과 그 밖의 범용(汎用)성의 부분품 ; 브러시(**제9603호**)

따라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운할유용 포트 ; 그리스용의 니플(nipple) ; 수동식 휠·레버와 손잡이 ; 안전덮개·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 오일 실 링(oil seal ring)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ring)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플렉시블한(flexible)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경화(vulcanisation)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와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기름이나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거나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선박용이나 보트용의 프로펠러(propeller)와 패들휠(paddle-wheel)도 포함한다.

제 85 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 제7011호의 유리제품
 -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 제94류의 전기가열식 가구
-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 정류기(metal tank mercury arc)는 제8504호로 분류한다.
-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사용될 물품의 보호용 하우징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 가목에서 규정한 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를 말한다(디지털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 제8523호에서
 -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 “스마트카드”란 하나 이상의 칩 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RAM)이나 롬(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나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이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7.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8.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저항기·축전기]를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 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 저항기, 축전기나 인덕턴스(inductance)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않은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는 제8542호로 분류한다.

9. 제8536호에서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는 디지털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신호의 증폭·재생·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10.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나 그 밖의 전기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 적외선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543호).

11. 제8539호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능동소자, 개별수동소자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에는 모듈을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에는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소자를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로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로 별개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구성하거나 기능하게 하는 모든 부품들은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고, 분리불가능하게 부착된 필수 부품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의 각 표현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 가) "반도체 기반"이란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되었거나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고, 반도체 기판이나 재료가 트랜스듀서 기능과 성능에 핵심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작동이 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을 포함한 반도체 특성에 기반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물리적·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 다) "반도체 기반 센서"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나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 라) "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actuator)"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 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 마) "반도체 기반 공진기(resonator)"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따라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 바)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이다(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는 전력공급이나 전력제어를 위한 부품은 장착하고 있지 않다.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능동 회로소자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액추에이터(actuator)·오실레이터(oscillator)·공진기(resonator)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

이 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

나) "실리콘 기반"이란 실리콘 기판 위에 조립되었거나,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2) "실리콘 기반 액추에이터(actuator)"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

(3) "실리콘 기반 공진기(resonator)"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

(4) "실리콘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소호주:

1. 소호 제8525.81호에는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다음의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것만을 분류한다.
 - 기록속도가 마이크로초당 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시간 분해도가 50나노초 이하인 것
 -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
2. 소호 제8525.82호에서 방사선 경화나 내(耐)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보강된 것을 말한다. 이들 카메라는 작동상의 품질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 \times 10^3 \text{ Gy}$ (실리콘) ($5 \times 10^6 \text{ RAD}$ (실리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3. 소호 제8525.83호에는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소호에는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소호 제8525.89호).

4. 소호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카세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만을 분류한다.
5.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재충전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

총설

(A) 범위와 구성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참조).
-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ulb)와 관(tube)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1) 전기의 발생·변환·저장에 사용하는 기기[예: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와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와 면도기·이발기와 모발제거기(제8510호)
-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
- (4) 녹음·음성재생용 기기; 영상기록기·재생기; 부분품과 부속품(제8519호부터 제8522호까지)
- (5)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유사 기록물용 기록매체(비디오녹화 매체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사진촬영용이나 영화촬영용 필름을 **제외한다**)(제8523호)
- (6)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 (7)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축전기(capacitor)(제8532호)·개폐기(switch)·퓨즈(fuse)·접속함 등(제8535호나 제8536호)·램프(제8539호)·열전자관 등(제8540호)·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전기용 탄소(제8545호)]
- (8) 전도성이나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제품과 재료[예: 전기절연선과 그 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전기절연용품·절연재료로 속을 텅 금속으로 만든 도관(제8547호)]

위의 전기용품 외에 이 류에는 또한 영구자석[자화(磁化: magnetisation)하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과 영구자석식의 가공물 홀더도 포함한다(제8505호).

그러나 이 류에는 **특정형의 전열기기**[예: 노(爐 : furnace) 등(제8514호)과 난방기기·가정용 기기 등(제8516호)]**만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제8523호 해당물품이나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이 류의 주 제12호 나목 4) 참조]로 간주하지 않는** 동시에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닌** 특정의 전자 메모리모듈[예: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 : 싱글 인라인 기억모듈)과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 : 듀얼 인라인 기억모듈)]은 제16부의 주 제2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a) 전용되거나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module)은 그 기계들의 부분품으로서 **제8473호**로 분류한다.
- (b) 전용되거나 주로 그 밖의 특정기계나 같은 호의 일군의 기계들과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은 **그 기계나 해당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 (c) 주 용도를 결정할 수 없는 모듈은 **제8548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식의 기기는 다른 류(주로 **제84류**)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제8402호**), 공기조절기(**제8415호**), 배소·증류나 그 밖의 기기(**제8419호**), 캘린더기나 그 밖의 압연기와 그 실린더(**제8420호**), 가공용의 부란기와 양육기(**제8436호**), 나무·코르크(cork)·가죽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낙인기계(**제8479호**), 의료용 기기(**제9018호**)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i)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류(특히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다. 예를 들면, 펌프와 팬(**제8413호**나 **제8414호**), 탭(tab)·콕 등(**제8481호**)·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 전동축·기어링(gearing) 등(**제8483호**)이 있다.
- (ii) 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들)가 속하는 호에나,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
- (iii) 그 밖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제8487호**에 분류한다.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 8501.10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501.2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 8501.3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 8501.3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8501.33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8501.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8501.40 -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전동기
 -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전동기
- 8501.5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 8501.5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8501.53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교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 8501.6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501.62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501.63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501.64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태양광 직류 발전기
- 8501.71 --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 8501.72 -- 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것
- 8501.80 - 태양광 교류 발전기

(I) 전동기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housing)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예: 방진(防塵 : dust proof)형·방적(防滴 : drip proof)형·방염(防炎 : flame proof)형의 전동기 ; 벨트구동의 전동기용이나 진동을 받는 전동용의 비고정식(non-rigid) 마운팅(mounting)].

많은 전동기는 운전 중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팬이나 그 밖의 냉각장치와 결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위치(time switch)·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pulley)·기어(gear)·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전동기·샤프트(shaft)·프로펠러(propeller)·러더(rudder)가 일체로 된 보트 추진용의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를 포함한다.

시계무브먼트(clock movement)용의 동기전동기(synchronous motor)는 기어가 장치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 다만, 이러한 동기전동기가 시계의 윤열에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제9109호)**.

(B) 선형전동기(linear motor)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선형유도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적층(자기박판층으로)된 자기회로(그 위에 코일이 배열되어 있다)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일차 멤버와 구리나 알루미늄의 판이나 형재 형태로 된 이차 멤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다.

이들 전동기는 일차멤버가 이차멤버에 대응하여 교류에 의하여 힘을 받을 때 추진력이 발생한다. 이들의 두 멤버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계적 접촉 없이 병진운동(다른 멤버가 움직일 때 한 멤버는 정지한다)이 일어난다.

선형유도전동기의 특징적인 모양은 설계된 목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구동용의 것[일차멤버는 차량에 옮겨서 트랙에 고정된 레일(이차멤버)을 걸쳐 놓는다] ; 적하물 취급장치 구동용의 것(바퀴식트롤리의 아래에 부착된 이차멤버판이 레일 사이에 부설된 일련의 일차멤버코일 위로 주행한다), 가공식 컨베이어 운전용의 것[일차멤버를 갖춘 보기(bogie)가 이차멤버 궤조 아래로 주행한다] ; 차량을 주차장이나 차량 스토어(store)에 위치시키는 것[이차멤버 팻릿(pallet)이 플로어(상)에 고정된 일차 멤버에 의해 교체되어진다] ; 피스톤펌프와 밸브제어용의 것[이 기능은 환상의 일차멤버 사이로 샤프트(이차멤버)가 전후로 움직이는 “폴리솔레노이드(polysolenoid)”식 선형 전동기에 의해 수행한다] ; 여러 가지 공작기계 장치용의 것 등 ; 이 있다.

DC 선형전동기는 그 작동이 전자석(電磁石)이나 전자석과 영구자석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며, 교류나 진동모터(예: 왕복펌프용·직기서틀 구동용 등), 스테퍼모터(stepper motor)(예: 소형 컨베이어) 등과 같이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1) 별도로 제시된 **보조전동기(servomotor)** : 주로 감속기어가 달린 전동기와 동력 전달장치[예: 레버·풀리(pulley)]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일러·노(爐 : furnace)·그 밖의 시설 속에서 여러 위치로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응급용의 수동(手動)식 휠을 갖출 수도 있다].
- (2) **자기동기장치(self-synchronising unit)** : 이것은 120°각도로 세 번 감은 스테이터(stator)와 두 개의 슬립 링(slip ring)에 연결시켜서 한 번 감은 로터(rotor)를 갖추고 있으며, 한 쌍(동기 송신기나 동기 수신기)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원격측정용이나 원격조종장치로 사용한다.
- (3) **전기밸브 작동기(valve actuator, electrical)** : 감속기어와 구동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플러그(valve plug)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전기시동기·변압기·핸드 휠 등)를 갖추고 있다.

(II) 발전기(lectric generator)

기계·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직류 발전기(DC generator : **dynamo**)와 교류 발전기(AC generator : **alternator**)의 두 가지 주요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두 기계는 필수적으로 하우징(housing) 내부에 장치된 고정자와 원동기(prime mover)에 의해 구동되는 축 위의 고정자(stator) 내측에 장치된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직류 발전기일 경우, 세그먼트(segment)를 가진 정류자가 회전자 축 위에 장치되어 있다. 발생된 전류는 정류자 세그먼트를 문지르는 탄소 브러시에 의해 모아져서 외부 회로로 흐르게 한다. 교류 발전기는 대부분의 경우 브러시가 없으며, 발생하는 전류는 외부 회로에 직접 도출한다. 그 밖의 교류 발전기의 경우 전류는 회전자축 위에 장치된 슬립 링(slip ring)에 의해 모아지며, 또한 슬립 링(slip ring)을 문지르는 탄소 브러시에 의해 이전한다.

고정자(stator)는 보통 전자석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종류의 직류 발전기(magneto-electric generator)에 있어서는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회전자(rotor)는 보통 적층철심(laminated iron core)에 권취된 선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자로 불린다. 어떤 교류 발전기에 있어서는 자계(field system)가 회전하는 것도 있다.

발전기에는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의 것이 있는데, 보통 원동기(prime mover)가 장치되어 있다(예: 수압 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식 증기엔진·피스톤식 내연기관). 단, 이 호에는 원동기가 없이 제시하는 발전기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태양광 발전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광전지 패널(panel)[그 밖의 다른 장치(예: 축전지(蓄電池)와 전자조절장치(전압조절기·변압장치 등))와 결합된 것]과 간단한 소자[예: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를 갖춘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력을 직접 전동기나 전해조(electrolyser)에 공급한다.

이 장치에서는 광전지가 직접 태양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광전지 변환)시켜 줌으로써 전력을 발생한다.

이 호에는 발전소용의 대형 발전기 ; 여자(勵磁 : excitation)용의 소형 보조발전기 ; 여러 가지 용도(예: 선박용·외부전원과 연결되지 않은 농장내용·전해용의 화학공업용과 디젤전기기관차용)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규격과 형태의 발전기를 포함하여 모든 발전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벨트(belt)나 롤러 컨베이어(roller conveyor)용 전동기를 결합한 드럼(drum)이나 롤러(roller)(**제8431호**)
- (b) **제8479호**의 진동전동기와 전자석(電磁石)식의 진동기(제8479호의 해설 참조)
- (c) 원동기(prime mover)가 부착된 발전기(**제8502호**)
- (d) 고압발전기(**제8504호**)

- (e) 일차전지(제8506호)
- (f) 발전기(dynamo and alternator)(내연기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조명 기기용이나 신호 기기용의 것)(각각 제8511호와 제8512호)
- (g) 광전지 : 모듈(module)에 조립되었는지 패널(panel)로 만들어졌는지에 상관없으나, 아무리 단순한 것일지라도 소자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를 들어 전동기나 전해조에 전류를 직접 공급하는 것(제8541호)
- (h) 특정의 전기기기 : 때때로 generator라고 하나 신호발생기와 같이 실제로 전기에너지를 발생하지 않는 것(제8543호)
- (ij) 제90류의 발전기[예: X-ray 발생기(제9022호)]; 발전기로서 전시용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에는 부적합한 것(제9023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8503호에 분류한다.

85.02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2.12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2.13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2.2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 풍력의 것

8502.39 -- 기타

8502.40 - 회전변환기

(I) 발전세트(electric generating set)

“발전세트(generating set)”란 발전기(electric generator)와, **전동기(electric motor)를 제외한** 여러 가지 원동기(prime mover)(예: 수력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유닛(unit)이나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한다).

용접기기용 발전세트로서 용접 헤드(welding head)나 용접기기 없이 별도로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단, 용접 헤드(head)나 용접기기와 함께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15호)**.

(II) 회전변환기(electric rotary converter)

이 기계는 주로 발전기와, 공통베이스 위에 전동기를 고정 설치한 원동기(prime mover)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기능이 공통의 권선(捲線: winding wire)부에 의하여 일체로 결합한 것도 있다. 이들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시키는 것과 같이 전류의 성질을 변환시키거나, 전압·주파수·교류위상수와 같은 특성을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예를 들면, 주파수 50짜이클을 200짜이클로 변환시키거나 단상(單相: single phase) 교류를 삼상교류로 변환시키는 것). 또 다른 형의 회전식 변환기(때로는 회전변압기로 불리운다)는 직류의 전압치를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8503호**에 분류한다.

85.03 -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셸(shell)과 케이스(case)·고정자(stator)·회전자(rotor)·컬렉터링(collector ring)·컬렉터(collector)·브러시 홀더(brush-holder)·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
- (2)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의 전기시트(electrical sheet)와 판(plate)

85.04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 8504.1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 유입식 변압기
- 8504.21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504.22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504.23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그 밖의 변압기
- 8504.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504.32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504.33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504.34 --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8504.40 - 정지형 변환기
- 8504.50 - 그 밖의 유도자
- 8504.90 - 부분품

(I)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서로 다른 전압·임피던스(impedance)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 이들 변압기는 보통 적층 철심에 다양한 형태로 절연전선을 감은 두 개 이상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예: 무선주파수 변압기) 자심(magnetic core)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 심이 응결된 철분·페라이트 등으로 만든 것도 있다. 한쪽의 코일(일차 회로)에서 받는 교류전류는 보통 다른 쪽의 코일(2차회로)에서 서로 다른 전류치와 전압치로 교류전류를 유도한다. 어떤 경우(자동변압기)에는 코일이 한 개 뿐이며, 권선(捲線 : winding wire)부분이 일차와 이차 회로에 공통으로 되어 있다. 외철형 변압기의 경우에는 그 변압기 주위가 적층철로 둘러싸여져 있다.

어떤 변압기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회로간의 임피던스(impedance)를 정합하기 위한 정합 변압기(matching transformer)와 전압이나 전류를 예를 들면, 측정용 기구·전력계나 보호용 계전기와 같은 연결된 기구의 수준까지 하강시키거나 상승시키는데 사용하는 계기용변압기(전류나 전압용의 변압기, 복합된 계기용 변압기) 등이 있다.

이 호는 모든 변압기(transformer)를 포함한다. 이는 무선기기·계기류·완구류 등에 사용하는 소형의 안정기(방전램프나 방전튜브를 통과하여 흐르는 전류의 양을 통제한다)로부터 냉각을 위하여 유조에 봉입하였거나 방열기·팬 등을 장치한 대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이 있다. 대형은 발전소·본선의 상호접속용 스테이션(stations for interconnecting main)·배전소와 변전소에서 사용한다. 주파수는 중파로부터 초고주파까지 변화한다. 이 호에는 쌍지어진 선에 있는 임피던스(impedance)의 균형을 유지시켜 전자기 간섭을 감소시키는 평형 불평형 변성기(baluns : balancing unit)를 포함한다.

변압기의 동력조절용량은 2차 정격전압(또는 해당시 암페어수)과 정격온도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주파수의 계속적인 사용에 근거한 킬로볼트 암페어(kVA) 출력이다.

전기용접장비용의 변압기가 용접용 헤드(head)나 용접 기구를 갖추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고, 용접용 헤드나 용접 기구를 갖추어 제시할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15호)**.

이 호에는 또한 **유도코일(induction coil)**을 포함한다. 유도코일은 일차측에서 단속적으로나 유동적(fluctuating)으로 직류가 이와 상응하는 전류를 이차측으로 유도하는 일종의 변압기이다. 전압을 상승시키거나 전화의 경우와 같이 일차측의 직류에 변동을 주어서 이와 상응하게 적은 변동전류를 이차측에 재생시키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모든 유도코일이 포함되며, 내연기관용 점화장치는 **제외한다(제8511호)**.

(II)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한 때로는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실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
- (B) **인버터(inverter)** :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것
- (C) **교류변환기(alternating current converter)와 사이클변환기(cycle converter)** : 교류 [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서로 다른 주파수나 전압으로 전환하는 것
-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정지형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 (1) **반도체변환기(semiconductor converter)**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요소로서의 반도체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장치[예: 냉각기·테이프도체·드라이브(drive)·조정기·제어회로]로 구성된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a) 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diode)·사이리스터(thyristor)·트랜지스터(transistor)]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정류기
- (b) 셀레늄 디스크를 사용하는 다결정체의 반도체정류기

(2) **가스방전 변환기(gas discharge converter)**. 예를 들면 :

- (a) 수은아크 정류기(mercury arc rectifier) : 변환소자는 유리구나 진공상태와 수은음극을 가진 금속탱크와 정류될 전류가 통로를 통과하는 하나 이상의 양극으로 구성한다. 그들은 보조 장치[예: 기폭(起爆)·충전·냉각·때로는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기폭(primer)장치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 가스방전정류기에는 예를 들면, 충전된 양극을 가진 “엑시트론(excitron)”과 점화기를 가진 “이그니트론(ignitron)”의 두 범주가 있다.

- (b) 백열음극을 가진 열이온정류기 : 이들 변환소자[예: 사이라트론(thyratron)]는 수은음극 대신 백열음극을 넣는 것 이외에는 수은아크 정류기(mercury arc rectifier)와 유사하다.

(3) **여러 접점 중에서 일방 전도성에 근거한 기계적 변환요소를 가진 변환기(converter with a mechanical converting element)**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접촉형 정류기(예: 캠축을 사용하는 것) : 정류된 교류의 주파수와 동시에 금속접촉이 개폐되는 장치를 가진 것
- (b) 수은 제트터빈 정류기(mercury-jet turbine rectifier) : 교류의 주파수와 동시에 움직여서 고정된 접점을 치는 수은회전제트를 가진 것
- (c) 진동정류기(vibrator rectifier) : 얇은 금속의 텅(tongue)을 갖는 것으로 교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며, 한 접점과 접촉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4) **전해정류기(electrolytic rectifier)** :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어떤 용액과 결합해서 전극으로 사용하는 어떤 물질의 결합물이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원리를 근거로 한 것

정지형 변환기는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

- (1) 고정기계나 전기식 견인차량(예: 기관차)을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
-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전기도금용과 전해용의 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 공급해주는 설비용의 변환기·가열용의 변환기·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

이 호에는 또한 고압발생기[특히 무선기기·방출관·마이크웨이브 튜브·이온 빔 관(ion-beam tube)과 함께 사용하는 것]로 알려진 변환기도 분류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전원(보통은 본선)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류를 고압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이며, 이 고압직류는 정류기·변압기 등에 의하여 연관되는 기기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호에는 또한 안정용의 전원공급기(조정기와 결합된 정류기)를 포함한다(예: 전자장비용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다만, 방사선용 기기의 공급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고압 발생기(변압기)는 **제9022호**에 분류한다. 자동전압 조정기는 **제9032호**에 분류한다.

(Ⅲ) 유도자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 무선회로·계기 등에 사용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하는(예: 회로가 단락되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 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유도자(inductor)나 인덕턴스(inductance)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음극선관용 디플렉션(편향) 코일은 **제8540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특히 금속탱크형 수은 아크 정류기는 펌프에 상관없이 항상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는 장치의 대부분의 전기부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

- (a) **제8536호**의 여러 가지 스위치(예: 다접촉 변압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 (b) 진공이나 수은증기정류관과 밸브(금속탱크형은 **제외한다**)와 사이라트론(thyratron)(**제8540호**)
- (c) 반도체 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사이리스터(thyristor)(**제8541호**)
- (d) **제8542호**의 물품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 금속으로 만든 것

8505.19 -- 기타

8505.2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85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영구자석(永久磁石 : permanent magnet)·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를 포함한다.

(1) 전자석(electro-magnet)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크기와 형태의 것이 있다. 주로 연철심(core of soft iron)의 주위에 전선을 감은 코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의 연철심은 한 개로 구성되거나 여러 개의 박판을 적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철심 위에 자성이 부여되므로, 이것은 인력용이나 반발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영구자석(永久磁石 : permanent magnet)과 자화(磁化 : magnetization)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영구자석(永久磁石 : permanent magnet)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硬鋼)·특수 합금·그 밖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를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한다. 편자형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판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특히 완구로 사용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자화(磁化 : magnetisation)한 후 영구자석(永久磁石)이 되는 물품은 그 모양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나 응결된 페라이트제[예: 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의 입방체(cube)나 원판형(disc : tag)으로 되어 있다.

(3) 전자석이나 영구자석(永久磁石)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이들 장치는 주로 가공대상물이 가공되는 동안 가공대상물을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자석을 사용한 여러 가지 형의 장치이다. 이 그룹은 공작기계 이외의 기계용 홀딩 장치를 포함한다(예: 인쇄기에서 인쇄판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석식 장치).

(4) 전자석 클러치(electro-magnetic clutch)와 전자식 커플링(coupling)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형이 있다. 어떤 형은 가동식의 전동자의 주위에 고정된 코일로 되어 있다. 전동자는 전류가 통하면 코일 내로 끌어 들여지고 전류가 차단될 때에는 스프링에 의하여 다시 코일 밖으로 끌어내진다. 이 호에는 또한 변속커플링(variable speed coupling)을 포함한다. 변속커플링 중에서 어떤 것은 비동기전동기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5) 전자식 브레이크(electro-magnetic brake)

일반적으로 전자석의 감응으로 차륜의 림(rim)이나 궤조에 사용하는 접촉부로 되어 있다. 다른 것은 전자유도의 원리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전자석에 의하여 축상에 설치된 연강(軟鋼)으로 만든 원판에 유도된 와전류(渦電流 : eddy current)의 작용으로 축을 제동하는 것도 있다. 다만, 이 호에는 전자석장치로 제어되는 기계적 유압식이나 공기압축식 브레이크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전자석 리프팅헤드(electro-magnetic-lifting head)

주로 전자석으로 조성되며, 일반적으로 원형으로서, 보통 크레인과 결합하여 사용한다(예: 스크랩 철의 리프팅용). 어떤 형은 특수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예: 구조선 위에서 난파선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것).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결합제(binder)를 가한 자성(磁性) 페라이트로서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의 것(제3824호)
- (b) 이 호의 전자석·영구자석·자석장치로서, 기계류·장치·완구·게임용구 등과 함께 제시하고 또한 그 일부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이들 기계류·장치 등과 함께 분류)
- (c) 자기기록용 매체[예: 두 장의 플라스틱 시트 사이에 비자화(非磁化)된 자성재료를 적층한 카드(특히 자기(磁氣) 자물쇠를 여는데 사용한다)](제8523호)
- (d) 안과용이나 외과용으로 설계된 전자석(제9018호)

85.06 - 일차전지(+)

- 8506.10 -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 8506.30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 8506.40 - 산화은으로 만든 것
- 8506.50 - 리튬으로 만든 것
- 8506.60 - 에어징크로 만든 것
- 8506.80 - 그 밖의 일차전지
- 8506.90 - 부분품

일차전지(primary cell and primary battery)는 화학반응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한다.

일차전지는 기본적으로 알칼리나 비알칼리의 전해질(예: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나트륨, 염화암모늄이나 염화리튬·염화암모늄·염화아연과 물의 혼합물)을 넣은 용기로 되어 있으며 전해질 중에는 두 전극이 침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양극은 일반적으로 아연·마그네슘·리튬이며 음극(cathode)[탈분극전극(脫分極電極 : depolarising electrode)]은 이산화망간(탄소가루와 혼합)·산화수은·산화은이다. 리튬 일차전지는 양극은 리튬, 음극은 예를 들어, 티오닐 클로라이드(thionyl chloride), 이산화황, 이산화망간·황화철 등으로 되어 있다. 수성의 용해액에서 리튬의 용해성과 반응성으로 인하여 비수성 전해질을 사용한다. 에어 징크(air-zinc) 일차전지에서는 알칼리나 중성 전해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아연은 양극, 산소는 전지로 확산하면서 음극으로 사용한다. 일차전지의 주요 특성은 재충전이 쉽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차전지는 전류를 많은 목적(벨·전화·보청기·카메라·시계·계산기·심장 박동 조절장치·라디오·장난감·휴대용 램프·가축몰이용의 전기막대기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셀은 배터리 내에서 직열·병열이나 직열과 병열의 결합으로 함께 그룹지어질 수 있다. 전지는 그 의도된 용도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예: 이미 알려져 있는 일정 전압을 발생하는 실험실용의 표준전지도 이 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전지를 포함한다.

- (1) **습전지(wet cell)** : 전해질이 액체이며 흐르는데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습전지는 방향(方向 : orientation)에 민감하다.
- (2) **건전지(dry cell)** : 전해질이 흡착제나 흡착 겔에 고정되어 있다[예: 페이스트(paste)를 형성하기 위해 한천(agar-agar)이나 가루같은 농후제와 혼합되어 있다]. 사용하는 전해질은 액체일 수 있으나, 흐르는데 제약이 있다. 건전지(dry cell)는 주로 휴대용 장치에 사용한다.
- (3) **불활성전지(inert cell)**·리저브(reserve)전지·리저브 배터리 : 사용하기 전에 물이나 전해질의 전부나 일부를 첨가하거나 전해질이 이온적으로 전도력이 있도록 가열되어야 한다.
- (4) **농축전지(concentration cell)** : 전해질의 농도가 각 전극에 따라 상이하다.

일차전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조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원통형이나 단추형이 있다.

어떤 종류의 전지[예: 습전지(wet cell)와 몇몇 불활성전지(inert cell)]는 보통 전해질 없이 제시하여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재충전이 가능한(rechargeable) 전지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들은 축전지(蓄電池 : electric accumulator)로서 **제8507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용기를 포함한 일차 전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터미널(terminal)(**제8536호**)
- (b) 태양전지(**제8541호**)
- (c) 탄소전극(**제8545호**)
- (d)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이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8548호**)
- (e) 열전대(熱電對 : thermocouple)(예: **제8503호 · 제8548호 · 제9033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506.10호 · 제8506.30호와 제8506.40호

이들 소호들의 분류는 음극(cathode)[탈분극전극(脫分極電極 : depolarising electrode)]의 구성물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음극이 이산화망간, 양극이 리튬인 일차전지는 **제8506.50호**의 리튬 일차전지로 분류한다(아래 소호 해설 참조).

소호 제8506.50호

이 소호의 분류는 양극(anode)의 구성물에 따라서 결정한다.

85.07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507.20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507.30 - 니켈-카드뮴 축전지

8507.50 -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507.60 - 리튬이온 축전지

8507.80 - 그 밖의 축전지

8507.90 - 부분품

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하며(충전) ; 곧이어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 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 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과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

축전지(蓄電池)는 주로 전해액을 담은 용기로 되어 있다. 전해액 안에는 외부회로에 접촉하기 위한 터미널을 부착한 두 개의 전극이 침지되어 있다. 많은 경우 그 용기는 다시 세분되어 있으며, 각 세분된 부분(cell)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전지를 구성하며 ; 이러한 각 전지는 고전압을 발생하기 위하여 보통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결된 다수의 셀은 배터리(battery)로 불리며, 또한 다수의 축전지가 보다 대형의 용기 속에 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축전지는 습전지와 건전지의 형태가 있다.

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의 주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연산축전지(鉛酸蓄電池)** : 전해액은 황산이며 전극은 작용물질을 지지(支持 : support)하고 있는 납판이나 납격자로 되어있다.
- (2) **알칼리축전지(alkaline accumulator)** : 전해액은 보통, 수산화칼륨 · 수산화리튬 · 티오닐 클로라이드이며 전극은 다음의 예와 같다.
 - (i) 니켈이나 니켈혼합물 양극과 철 · 카드뮴 · 메탈하이드라이드 음극 ;
 - (ii) 산화리튬코발트 양극과 흑연혼합물 음극 ;
 - (iii) 탄소 양극과 금속리튬이나 리튬얼로이 음극 ;
 - (iv) 산화은 양극과 아연 음극

전극은 단순한 판 · 격자 · 봉 등이나 작용물질로 된 특수한 페이스트(paste)상의 것을 피복하거나 충전한 격자나 관(tube)으로 되어있다. 연산축전지(鉛酸蓄電池)용 용기는 보통 유리로 만들지만 자동차용 축전지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 경질(硬質)고무 · 합성물질로 성형되어 있다. 대형 정치식의 축전지에는 유리나 납을 내장한 플라스틱이나 목재상자를 사용한다. 한편, 알칼리축전지(alkaline accumulator)용 용기는 보통 강(鋼)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다. 알칼리축전지는 축전지가 전원이 되도록 하는 장치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특정한 크기와 모양을 갖출 수도 있다. 이것들은 방수성 용기에 담겨 있기도 하다. 많은 알칼리축전지는 제8506호에 열거된 일차전지와 같은 외관을 하고 있다.

축전지(蓄電池)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한다(예: 자동차·골프카트·포크리프트 트럭·동력 수공구·셀룰러폰·휴대용 자동차자료처리기계·휴대용 램프).

어떤 종류의 연산축전지(鉛酸蓄電池)는 비중계를 장치하고 있으며, 비중계는 전해액의 비중(比重)을 측정하여 축전지(蓄電池)의 충전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표시한다.

축전지(蓄電池)는 전해액 없이 제시하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蓄電池)(종종 “전지 팩(battery pack)”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회로 보호 장치·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 납판과 납격자[페이스트(paste)를 도포했는지에 상관없다] ;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비경화(非硬化 : unhardened) 가황(加黃) 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모양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터미널(제8536호)

(b) 수명이 끝난 축전지(蓄電池)와 이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8548호)

85.08 - 진공청소기

- 전동기를 갖춘 것

8508.11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508.19 -- 기타

8508.6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8508.70 - 부분품

제85류의 주 제1호라목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양탄자 두드림 장치·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

이 호는 특히 진공청소기 형태의 말이나 소의 털 손질기를 포함한다.

양탄자를 그 자리에 두고 양탄자에 세정용액을 분사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양탄자 청소용 기기(건식과 습식의 콤비네이션 진공청소기는 아니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제8451호나 제8509호).

이 호는 또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진공기기도 **제외한다** (제9018호).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비

이 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솔·광택기·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나 호환성 부분품(양탄자 장치·회전식 솔·다기능 흡입 헤드 등)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함께 제시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품이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의 해설서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기기용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85.09 -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일주스·채소주스 추출기

8509.80 - 그 밖의 기기

8509.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 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분리형의 전동기로 구동되는 기기(플렉시블 샤프트·전동벨트·그 밖의 전동장치에 의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하며, 또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하도록 만든 기기(예: 식품공업용·굴뚝 소제용·기계 클린용·도로 소제용의 기기)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8210호나 제84류**에 분류한다.

이 호의 기기에는 다음의 두 그룹이 있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A) 중량에 관계없이 여기에 분류하는 한정된 몇몇 품목

이 그룹은 다음 물품만으로 구성한다.

- (1) **바닥광택기(floor polisher)**(왁싱 장치와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를 가진 것에 상관없다)
- (2) **식품용 그라인더(food grinder)와 믹서(mixer)**: 예를 들면, 육(肉)·어류·채소·과실의 분쇄기; 커피·쌀·보리·쪄낸 완두콩 등의 다목적 분쇄기; 밀크쉐이커; 아이스크림 믹서; 셔벳(sorbet) 믹서; 가루 반죽기; 마요네즈 비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쇄기와 믹서(호환성 부분품에 의하여 절단하거나 그 밖의 조작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또한 포함한다)
- (3) **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

(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1) **마루를 쓸고, 닦고, 씻어내는 기기와 세척 후 오수나 비누거품을 흡수하는 기기**
- (2) **마루를 닦기 전에 마루에 광택나는 재료를 살포하는 기기**: 이 기계에는 보통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 (3)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한다.
- (4) **감자나 그 밖의 채소용의 탈피기(peeler)·치퍼(chipper)·절단기(cutter) 등**

- (5) **모든 종류의 세절기**(slicer of all kinds)(예: 육·소시지·베이컨·치즈·빵·과실·채소용의 것)
- (6) **칼 가는 기계(knife sharpener)와 나이프 클리너(cleaner)**
- (7) **전기칫솔(electric tooth brush)**
- (8) **공기 가습기(air humidifier)와 공기제습기(dehumidifier)**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치

위에 열거한 기기 중의 많은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환성 부분품이나 보조 장치와 함께 제시한다. 예를 들면, 절단·분쇄·포립(泡立: whipping)·잘게 저미는 것 등에 사용하는 식품용 믹서; 호우닝(honing)과 연마 장치를 갖춘 슬라이서; 연마브러시 세트를 갖춘 마루 세정기; 비눗물의 공급 장치, 오수나 비누거품을 제거하는 흡수장치를 갖춘 세정기 등이다. 이와 같은 기기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기기와 함께 제시하였고 그 종류와 수량이 보통 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만**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여분의(extra) 호환성 부분품과 분리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의 중량은 그 기기가 앞에서 설명한 (B)의 조건하에 이 호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의 기기는 사용의 편의상 동활차(runner)·카스터(caster)·이와 유사한 장치 위에 부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팬이나 팬을 장치한 환기용이나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414호)
- (b) 냉장고(제8418호)
- (c) 로울기(roller machine)와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 (d)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와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 (e) 접시세척기(제8422호)
- (f) 예초기(제8433호)
- (g) 낙농형의 버터 교유기(攪乳器)(제8434호)

- (h) 과일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로서,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공업용이나 상업용의 것(각각 제8435호나 제8438호)
- (ij) 양탄자 청소용 기기[양탄자를 그 자리에 두고 양탄자에 세정용액을 분사한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기기이며, 호텔·모텔·병원·사무실·식당·학교와 같은 시설(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제8451호)
- (k) 재봉기(제8452호)
- (l) 모발제거기(제8510호)
- (m)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
- (n) 마사지 기기(제9019호)

85.10 - 면도기 · 이발기 · 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510.10 - 면도기
- 8510.20 - 이발기
- 8510.30 - 모발제거기
- 8510.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전기면도기와 전기이발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람에게 사용하는지, 양모를 깎는데 사용하는지, 말을 손질하거나 소의 털을 깎는 등에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에 있어서는 커터나 나이프의 날이 구멍을 뚫거나 세혈(細穴)이 있는 판의 내측을 회전하거나 왕복하게 함으로써 구멍이나 세공을 통하여 내밀고 나온 털(모)을 깎는 것이다. 이발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빗과 같은 커터의 날이 고정된 금속제의 빗 위를 좌우로 움직여서 빗살 사이에 잡힌 머리털이나 양모를 깎는 것이다. 이발사용의 이발기는 양털을 깎거나 손질 등을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에 의하여 조작되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이 호에는 전동기(전기모터)를 갖춘 전기기계식 모발제거기를 포함하며 ; 모발을 잡고 모발을 모근에서 뽑아내는 이 기기는 마이크로롤러나 자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금속제 나선형 용수철이나 보호 장치 · 털 뽑는 헤드 · 털 뽑는 휠 세트로 작동할 수도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전기면도기 · 이발기 · 모발제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특히 커터의 머리부분 · 커터의 날 · 칼날 · 빗날을 포함한다.

*
* *

별도 분리된 전동기로 구동하는 플렉시블 샤프트(flexible shaft)에 의하여 작동하는 이발기는 제8214호에 분류하고, 전동기[플렉시블 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치했는지에 상관없다]는 제8501호에 분류한다.

85.11 -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 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8511.10 - 점화플러그
- 8511.2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 8511.30 - 배전기와 점화코일
- 8511.40 -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 8511.50 - 그 밖의 발전기
- 8511.80 - 그 밖의 기기
- 8511.90 - 부분품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generator)와 개폐기(開閉器 : cut-out)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점화플러그(sparking plug)

이것은 절연한 중앙의 전극과 케이싱에 부착된 단극(또는 다극)으로 되어 있다. 케이싱(casing)은 기관의 실린더헤드(cylinder-head)에 나사못을 박기 위하여 그 기저에 부분적으로 나삿니를 파서 전원에 접속되도록 중앙 전극의 상부에 단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고전압을 중앙 전극에 가하면 해당 전극과 단극(또는 다극)과의 사이에 점화가 발생하여 기관의 실린더(cylinder) 내에 있는 폭발성 혼합가스의 점화에 사용한다.

(B) 점화용 자석발전기(ignition magneto)[직류 자석발전기(magneto-dynamo)를 포함한다]

이들은 내연기관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 공급되는 필요한 고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 주로 경주용 자동차·트랙터·항공기·모터보트(motor-boat)·모터사이클의 기관용으로 사용하며, 그 주요한 형은 다음과 같다.

- (1) **회전전동자형 자석발전기(revolving armature magneto)** : 이것은 저압의 일차 코일을 감은 전동자가 영구자석의 극 사이를 회전하는 일종의 교류 발전기를 결합한 것이다. 일차코일은 접촉식의 차단기와 축전기(capacitor)에 접속되어 그 코일 내의 전류를 급격히 발생·차단하면 이차 코일 내에 초고전압을 유기시킨다. 보통 전체가 하나의 하우징(housing) 내에 조합되어 있으며 그 위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 차례로 전압을 배전하는 배전기 아암(distributor arm)이 장착되어 있다.
- (2) **고정 전동자형 자석발전기(stationary armature magneto)** : 여기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 어느 형이든 전동자 권선(捲線 : winding wire)·접촉식의 차단기와 축전기(capacitor)가 고정되어 있지만 ; 그러나 어떤 형에 있어서는 자석이 회전하는데 반하여 다른 형에 있어서는 그 자석은 고정되어 있고 연결체의 유도자(soft iron inductor)가 자석과 전동자권선(捲線 : winding wire) 사이를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 (3) **직류 자석발전기(magneto-dynamo)** : 이것은 단일장치에 공통구동력을 결합한 자석발전기와 직류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보통 모터사이클에 사용한다.

(C) 마그네틱 플라이휠(magnetic flywheel)

이것은 점화용의 저압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자기 장치[플라이휠(flywheel)에 부착되어 있다]로 되어 있다.

(D) 배전기(distributor)

이것은 점화 플러그(sparking plug)에 대하여 차례로 점화 전류를 배전하며 또한 점화 코일의 일차 권선(捲線 : winding wire)에 전류를 보내거나 차단시키기 위하여 단속기를 갖추며 ; 배전과 단속의 두 작용은 기관으로 구동되는 캠(cam)에 의하여 실린더(cylinder) 내의 피스톤의 왕복작용과 동시성을 갖는다.

(E) 점화코일(ignition coil)

이것은 특별히 만든 유도코일(induction coil)로 되어 있으며 보통 원통형의 용기에 넣어져 있다. 단속기를 거쳐 일차 코일을 축전지(蓄電池)에 접속하면 고전압이 이차측에서 발생하여 배전기를 경유하여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 유도된다.

어떤 점화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중점화코일이 두 개의 점화 플러그(sparking plug)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코일은 각 플러그에서 동시에 점화불꽃을 발생시키는데 하나의 플러그에서 발생하는 점화는 해당 실린더(cylinder)에 동력행정을 생산하며 또 다른 플러그에서 발생하는 점화는 배기행정으로서 실린더에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점화 코일이 직접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 연결되어 있어서 배전기가 필요 없다.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코일은 전자(電子)적(반도체) 코일모듈(coil module)에 의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F) 시동전동기(starter motor)

이 기계는 보통 직류 직권형의 소형전동기이다. 이 전동기는 시동하여야 할 내연기관과 일시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나사의 축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소형 피니언(pinion)이나 그 밖의 기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G) 발전기(generator)(직류용과 교류용)(dynamo and alternator)

이것은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며, 축전지(蓄電池)에 충전을 하고 자동차·항공기 등의 조명장치·신호장치·가열장치·그 밖의 전기장치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교류 발전기에는 정류기(rectifier)를 사용한다.

(H) 승압코일(booster coil)

이것은 시동할 때의 기관의 회전속도가 그 기관의 자석발전기를 작동시키기에는 너무 낮을 경우에 사용하는 소형 유도코일이며, 주로 항공기에 사용한다.

(I) 예열플러그(glow plug)

이것은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와 유사하나 전극과 포인트의 대신에 점화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작은 저항체를 갖추고 있어서 전류가 흐를 때에 그 저항체를 가열한다. 디젤 기관의 시동전과 시동 중에 실린더(cylinder) 내의 공기를 가열시키는데 사용한다.

(K) 가열코일(heating coil)

이것은 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디젤기관의 공기취입구에 부착되는 것이다.

(L) 직류발전용 개폐기(dynamo cut-out apparatus)

이것은 기관이 정지하거나 저속도로 회전할 때에 직류 발전기가 축전지(蓄電池)의 전류를 소비하여 전동기로서 구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단일의 하우징(housing)에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를 결합한 개폐기(開閉器 : cut-out)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장치는 축전지(蓄電池)와 직류 발전기를 보호하는 외에 또한 충전에 소요되는 한계 전류치를 확보하고 일정량의 충전 전류를 공급하게 하기도 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a) 비행장·버스정류장 등에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시동용 기기로서 주로 변압기와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제8504호)
- (b) 축전지(蓄電池)(제8507호)
- (c) 조명만의 목적으로 자전거에 사용하는 직류 발전기(제8512호)

85.12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512.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8512.4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8512.90 - 부분품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건전지(제8506호) · 축전지(蓄電池)(제8507호) · 제8511호의 직류 발전기와 직류 자석 발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직류 발전기(dynamo)** : 자전거나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모터사이클의 타이어나 휠 림(wheel rim)의 한쪽을 회전하는 마찰륜(摩擦輪)에 의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2) **건전지 홀더(battery holder)**(자전거의 조명장치용으로 스위치 · 터미널(terminal) · 접점 등이 장치되어 있는 것) ; **건전지 작동식 램프(battery-operated lamp)**(자전거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 확산램프 ; 무중(霧中) 램프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 경찰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하는 것이나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 (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
- (5) **제동등(braking light) · 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 · 후진등(reversing lamp) · 이와 유사한 것**
- (6) **앞에서 설명한 램프 몇 개를 조합하여 한 개의 케이스에 조립한 것**
- (7) **내부조명등(interior lighting signals)** : 천장램프 · 벽램프 · 계단표시램프 · 문틀램프 · 계기판램프와 같은 것
- (8) **발광 추월 신호기(luminous overtaking signal)** : 추월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자동적으로(때로는 광전지에 의한 것도 있다)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것
- (9)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electrical visual signalling apparatus)**[예: 트레일러(trailer)를 부착한 차량용의 조명 삼각대, 택시 · 경찰차 · 소방차 등에 사용하는 조명표지(회전돛형이나 “막대조명(lightbar)”형)]

- (10)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parking equipment)** : 감지기가 연석이나 그 밖의 물체에 부딪혔을 때에 점등이나 그 밖의 신호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 (11)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 : 자동차에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신호를 발한다.
- (12) **경보기(horn) · 사이렌(siren) ·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al sound signalling appliance)**
- (13) 자동차가 후진 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보통 초음파 센서 · 전자통제장치 · 버저(buzzer)나 신호발신 장치 · 관련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14)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전기기기(electrical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 이 기기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이나 레이저건)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이거나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게 경고한다.
- (15)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 :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이중식의 것을 포함한다.
- (16)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 윈드스크린(windscreen)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프레임(frame) 내에 장치한 저항선(resistance wire)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유리로 만든 렌즈(제7014호)
- (b) 공기조절기나 기기(제8415호)
- (c) 마이크론(microphone) · 가청주파증폭기 · 확성기로 구성되는 전기음향증폭세트로서 트레일러(trailer)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경적이나 그 밖의 노상의 음을 견인차의 운전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것(제8518호)
- (d) 제8536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기기를 부착한 배전반 · 패널(panels) · 그 밖의 기반(基盤)[예: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에 설치하는 스위치류의 조립품](제8537호)
- (e)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을 포함한 제8539호의 전등
- (f)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일정한 길이로 잘랐거나 커넥터에 고정되었거나 세트(예: 점화선 세트)로 만들어 졌는지에 상관없다](제8544호)
- (g) 제상기(defroster)나 제무기(demister)로서도 작용하는 비전기식 자동차용 난방장치(제7322호나 제8708호)

85.13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 제외한다)

8513.10 - 전등

8513.90 - 부분품

이 호에는 갖추어진 전원[예: 건전지·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자석발전기]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전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두 개의 요소(즉, 전등과 전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하나의 케이스 내에 보통 함께 장착되어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형에 있어서는 이들 요소는 분리되어 전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휴대용 전등(portable lamp)”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이나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전등(즉 전등과 전원공급 장치를 포함한다)만을 말한다. 보통 이들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한 모양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용도에는 자동차용이나 자전거용의 조명기구(제8512호), 고정된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전등은 **제외한다(제9405호)**.

이 호에 해당되는 전등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포켓전등(pocket lamp)** : 어떤 것[“다이나모 램프(dynamo lamp)”]은 스프링부 레버를 수동(手動)조작하여 자석발전기를 구동시켜서 점등하는 것도 있다.
- (2) **그 밖의 휴대식 전등(hand lamp)**(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휴대식 전등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 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한편 그 밖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 (3) **회중전등(lamp torch)이나 손전등(flashlight)** : 펜(pen)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의 주머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클립(clip)이 장착된 경우가 많다.
- (4) **모르스 신호용 전등(morse signalling lamp)**
- (5) **광부용 안전등(miners' safety lamp)** : 조명장치가 보통 광부의 헬멧에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전원[축전지(蓄電池)]은 보통 벨트에 걸려 있다.
- (6) **일반적으로 사용(범용)하는 시험용 전등(examination lamp)** : 보통 구부러진 금속제의 스트립(strip)으로 되어 있는 헤드밴드(headband)에 고착되어 있다. 이러한 전등은 그 자체의 전원[예: 사용자의 주머니(pocket)에 있는 건전지]을 갖는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전등은 의사·시계공·보석공 등에 의하여 사용한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특수한 진단용 전등(예: 목구멍이나 귀의 검사용)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8호)**.
- (7) 피스톨(pistol)·립스틱(lipstick) 등의 모양으로 된 **회중전등(fancy torch)** : 전등이나 회중전등(torch)과 펜·나사돌리개·열쇠를 켜는 고리 등으로 구성된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은 전체의 주요기능이 조명용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8) **독서용 전등(reading lamp)** : 책이나 잡지에 부착하기 위하여 클립(cl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장착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전등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진용 섬광기구(flash-light apparatus)(제9006호)

(b)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가 내장되어 있는 레이저 포인터(laser pointer)(제9013호)

85.14 -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11 -- 열간 등압성형기

8514.19 -- 기타

8514.2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514.31 -- 전자 빔 노(爐)

8514.32 -- 플라즈마·진공 아크식 노(爐)

8514.39 -- 기타

8514.4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예: 전도체 내에서의 전류의 가열 효과에 의하거나 ; 전기 아크(arc)로부터 얻어진다] 많은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기 가열식의 기계·기와 장치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전자유도식(induction)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의 노(爐 : furnace)와 오븐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를 포함한다[예: 공업용 마이크로웨이브 노(爐 : furnace)·오븐과 기기]. 이 호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전열기기는 제외한다(제8516호).

**(I)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 : furnace)와 오븐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

전기식 로와 오븐은 주로 약간 밀폐된 공간이나 용기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에서 비교적 고온이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목적[용해·소둔·뜨임(tempering)·에나멜링·용접·용접물의 열처리 등]으로 사용한다. 주요한 형에는 레토르트(retort) 로·벨형 로·트로프(trough) 로·도가니 로·터널 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爐 : furnace) 중의 어떤 것은 특수한 기울임 장치(tilting attachment)를 갖추었거나 산화(酸化)방지를 위하여 특수한 가스 중에서 금속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 용기가 갖추어져 있다.

이 그룹에 분류하는 전기식 로와 오븐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A)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resistance heated furnace and oven)** : 이 노(爐 : furnace)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하여 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열 요소(저항체)는 복사(輻射 : radiation)와 대류(對流 : convection)에 의해 열을 원광석이나 충전물에 전달한다.
- (B) **가열대상물인 금속 봉이나 알갱이 상태의 물질이 저항체로 작용하는 가열용 저항로** : 이것은 피가열체에 전류를 통하도록 만든 용기로 되어 있다. 가열대상물의 전기저항은 필요한 열을 발생한다.
- (C) **액체저항로(liquid resistance furnace)** : 이것은 전극을 갖춘 통(槽)으로 되어 있다. 사용할 때에는 그 통에 용융금속·용융염·특수유를 넣어서 전극에 의하여 그 액 중의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필요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목적물을 액체가 담긴 통에 넣음으로서 가열한다.
- (D) **금속 용해나 정제용 전기분해로(electrolytic furnace for smelting of refining metal)** : 이것은 용해전해조(電解槽)의 전해질에 잠겨 있는 전극을 갖춘 액체저항로이다. 전해조는 용해소금에 녹아 있는 광석의 성분을 함유하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전극을 경유하여 전해질을 통과하는 전기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해질 분해는 양극(陽極)에서 가스가 방출되는 동안 음극(陰極)에서는 순수한 용해 금속이 축적되도록 한다.

- (E) **저주파 유도로(low frequency induction furnace)** : 일차 코일의 저주파 교류가 가열하여야 될 충전물과 연철심(soft iron core)에 의하여 자기(磁氣)적으로 결합되어서 그 충전물 중에 가열하기 위한 전류를 유도한다. 이러한 형식의 어떤 노(爐 : furnace)에 있어서는 용융된 충전물이 수직 방향의 환(環)상으로 된 배관을 통하여 주된 도가니에서 순환되며 한편 그 관 내에서는 일차회로로부터 가열 전류가 유도된다.
- (F) **고주파 유도로(high frequency induction furnace)** : 일차 코일의 고주파 교류(때로는 무선주파수)가 가열하여야 될 충전물에 와전류(渦電流 : eddy current)를 유도시킨다. 이 형의 노(爐 : furnace)에는 철심이 없다.
- (G) **유전식 정전용량 노와 오븐(dielectric capacitance furnace and oven)** : 비도전성의 충전물이 교류 전원에 접속된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그 장치는 축전기(capacitor)로서 작동되며 충전물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은 충전물 중에 발생될 열의 원인이 된다. 이 그룹에는 **공업용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이 포함되며, 그 내부에서 가열되어야 하는 유전성 물체는 전자기파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전손실에 의해, 과장으로부터 발생된 에너지는 일시에 물체 전체에 걸쳐서 열로 변환이 되며 이로 인하여 매우 균일한 가열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오븐은 건조·서리제거·플라스틱의 주조·도자기 굽기 등에 사용한다.
- (H) **아크(arc)식의 노(爐 : furnace)** : 이 노(爐)에 있어서는 전극간이나 전극과 가열대상물과의 사이에 생기는 전기 아크(arc)에 의하여 열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 노(爐)는 선철·여러 가지의 페로알로이·탄화칼슘의 제조, 철광석의 환원, 공기 중의 질소의 고착 등에 사용한다. 어떤 저온 아크로는 또한 비교적 끓는점이 낮은 물질(예: 아연이나 인)의 증류용으로 사용하며 ; 다만, 이 노(爐)가 증류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응축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 전체가 이 호에 **제외한다(제8419호)**.
- (I) **적외선방사로(infra-red radiation oven)** : 이 노(爐 : furnace)는 많은 적외선 전구나 적외선 방사관에 의하여 가열한다.

어떤 노(爐 : furnace)나 오븐은 하나 이상의 가열방법[예: 금속 등의 용해와 가열용 고주파·저주파 유도나 저항로(爐) ; 적외선과 고주파의 비스킷을 굽는 오븐 ; 물체를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과 저항과 유전(誘電)식 정전용량(극초단파) 오븐]을 사용하고 있다.

이 호에 열거된 노(爐 : furnace)와 오븐(oven)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빵(bread)·파이(pastry)·비스킷 제조용 오븐**
- (2) **치과용 오븐(dental oven)**
- (3) **화장장(crematorium)용 노(爐)**
- (4) **쓰레기 소각용 노(爐)**
- (5) **유리의 소둔(annealing)이나 뜨임(tempering) 노(爐)나 오븐**

이 호에는 건조, 살균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전기식 가열기기를 **제외한다(제8419호)**.

(II)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이 호에는 그 형태가 노(爐 : furnace)나 오븐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식의 가열기기(예를 들어 전자파 기기)도 포함한다. 이 기기(주로 소형물의 열처리에 사용한다)는 주로 특정한 판이나 코일(때로는 처리하여야 할 특정 물품에 맞춰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을 함께 부착한 고주파 진동을 발생시키는 전기장치로 되어 있다.

이들 기기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1) 유도코일을 갖춘 기계 : 재료가 전기의 양도체인 것으로 만든 유도 물체로 가열하는데 사용하며, 전력은 저주파·중주파·고주파 전력을 이용한다[예: 크랭크축·실린더(cylinder)·콕휠(cog wheel)·그 밖의 금속 부분품의 표면경화(硬化)용 기계 ; 용해·소결·소둔·뜨임·금속부분품의 예열용 기계].
- (2) 축전기(capacitor)(예: 판·봉 모양)로 사용하는 전극을 갖춘 기계 : 재료가 전기의 부도체나 불량도체인 것으로 만든 물체를 유전식(capacitive) 가열용으로 사용하며, 전력은 고주파 전력을 이용한다[예: 목재 건조용 기계 ; 펠릿(pellet)이나 가루 형태 등의 재료를 성형하면서 열경화(熱硬化 : thermohardenable)할 수 있게 예열하는 기계].

어떤 특수한 형의 장치는 코일을 통과한 봉의 연속적인 열처리를 위해서나 일련의 물품을 반복처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회전식 변환기(rotary converter)와 고주파 발생기(high-frequency generator)도 열처리장치와 함께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각각 분리하여 제시하였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제8502호**나 **제8543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금속의 납땀이나 땀질에 사용하는 유전처리용 기계와 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의 용접에 사용하는 유전손실(dielectric loss)에 의한 열처리 기계(예: 용접용 고주파 프레스 기계와 고주파선 용접기계)는 **제8515호**에 분류한다. 가열장치를 부착한 프레스기는 또한 **제외한다(제84류)**.

*
* *

이 호는 또한 고온 야금법에 의하여 조사된 핵연료의 분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노(爐 : furnace)와 그 밖의 기기를 포함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용기기(예: 방사성 찌꺼기를 함유한 진흙이나 유리의 연소용이나 흑연이나 방사성 필터의 연소용)나 재순환을 위해 재생된 핵분열성(fissile) 물질의 소결이나 열처리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동위원소 분리용기기는 **제8401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전기자(電機子)·문·검사구멍·패널(panel)·도움(dome)·전극홀더·금속전극].

*
* *

단, 이 호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a) 전기로의 건설이나 내장용 벽돌·블록·이와 유사한 내화물·세라믹 물품(제69류)
- (b) 반도체 웨이퍼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전기로와 오븐(제8486호)
- (c) 전열용저항체(경우에 따라 제8516호나 제8545호)
- (d)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전극(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545호)

85.15 -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 · 광자빔식 · 초음파식 · 전자빔식 · 자기펄스(magnetic pulse)식 ·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 · 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 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 땜질용이나 납땜용 기기

8515.11 -- 납땜용 인두와 건(gun)

8515.19 -- 기타

-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8515.29 -- 기타

-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8515.39 -- 기타

8515.80 - 그 밖의 기기

8515.90 - 부분품

(I) 납땜용(soldering) · 땜질용(brazing)이나 용접용 기기

이 그룹은 납땜용(soldering) 기기 · 땜질용(brazing) 기기 · 용접용 기기를 포함한다(휴대식인지 고정식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절단기능을 가진 기기들도 여기에 포함한다.

용접조작은 수동(手動)식, 전자동식, 반자동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땜질용(brazing) 기기 · 납땜용(soldering) 기기

열은 보통 전력을 이용한 유도나 진도에 의해 발생한다.

땜질(brazing)이나 납땜(soldering)은 모금속과 조화되는 저용융점(低溶融點 : lower melting point)을 가진 용가재(filler metal)에 의해 금속 부분이 접합되도록 작용한다. 모금속은 결합할 때 용융하지 않는다. 용가재는 모세관 인력에 의하여 접합표면 사이에 공급한다. 땜질(brazing)은 사용한 용가재 금속의 녹는점의 온도에 따라 납땜과 구별한다. 납땜(soldering)은 녹는점이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지지만 땜질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450°C 이상이다.

이 그룹에는 땜질(brazing)이나 납땜(soldering)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수장치(예를 들면, 용접심선 공급 장치)의 기기만을 분류한다. 다른 기기는 제8514호에 해당하는 노(爐 : furnace), 오븐, 가열장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가열식의 수동(手動)식 납땀인두(soldering iron)도 포함한다.

(B)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resistance welding of metal)

용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열은 접합되는 부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데에 대한 저항에 의하여(주울열 : Joule heat) 발생한다. 용접 할 때 용접되는 부분은 가압되어 함께 지지(支持)되며 용제나 용가재(filler metal)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계들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용접되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에 포함되는 기계는 예를 들면, 바트 용접기와 플래쉬 바트(flash butt) 용접기기 ; 용접총을 갖춘 싱글-스폿 용접기(전원을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멀티스폿 용접기와 그 결합장치 ; 프로젝션 용접기와 시임(seam) 용접기, 고주파저항 용접기기가 있다.

(C) 금속의 아크(arc)나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 용접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 아크용접

열원은 두 개의 전극간이나 전극과 가공대상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아크이다.

이러한 것에는 많은 종류의 기계들이 있다. 예를 들면, 피복전극을 사용하는 수동(手動)식 금속아크 용접기 ; 가스-시일드(gas-shielded) 아크 용접기 ; 소모성이나 비소모성 전극이나 도포(covered)아크를 사용하는 용접기나 절단기[불활성가스 금속아크 용접기(MIG-Metal Inert Gas) ; 활성가스 금속 아크 용접기(MAG-Metal Active Gas) ; 불활성 텅스텐 아크 용접기(TIG-Tungsten Inert Gas)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SA : submerged arc welding), 일렉트로-슬래그(slag)나 일렉트로-가스 용접기 등]가 있다.

(2)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 용접

열원은 보조가스를 전리(ionisation)와 해리(解離 : dissociation)작용에 의해 [플라즈마 제트(plasma jet)]로 변환시켜 집중(集束)한 아크이다. 그 가스는 불활성 가스(아르곤·헬륨), 다원자 가스(질소·수소)나 이의 혼합 가스이다.

(D) 유도식 금속 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induction welding of metal)

열은 하나나 그 이상의 유도코일(induction coil)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한다.

(E) 전자빔식 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electron beam welding)(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열은 용접이나 절단될 부분에, 진공에서 발생된 집중전자빔의 전자충돌에 의해 발생한다.

(F) 진공확산 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vacuum diffusion welding)

열은 일반적으로 유도(induction)에 의하여 발생되나, 전자빔이나 저항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기기는 주로 진공조·진공펌프·가압장치·가열장치로 이루어진다.

(G) 광자빔식 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photon beam welding)(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광자빔식 용접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레이저빔식 용접기(laser beam welding)

열은 본래 고휘도빔으로 집속될 수 있는 **간섭성(coherent)** 단색의 방사선원에서 유도한다. 그러한 열은 용접될 부분에 이들 고광도빔이 충돌해서 발생한다.

(2) 라이트빔식 용접기(light beam welding)

열은 **비간섭성(non-coherent)** 집속광빔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다.

(H) 열가소성 재료의 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welding thermoplastic material)

(1) 전기가열가스로 용접하는 것(열가스 용접)(hot gas welding)

접합될 표면은 전기적으로 가열된 가스(일반적으로 공기)로 데워지며 가압으로 접합한다(첨가제를 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전기가열 엘레먼트(element)로 용접하는 것(가열엘레먼트용접)(heating element welding)

접합한 표면은 전기적으로 가열된 엘레먼트(element)에 의하여 데워지며 가압으로 접합한다(첨가제를 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고주파 용접(high-frequency welding)

상당한 고유전손실(high dielectric loss)의 성격을 갖는 열가소성 재료[예: 아크릴폴리머(acrylic polymer) ·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 폴리아미드(polyamide)(예: 나일론)]의 표면은 고주파 전자계 내에서 가열되며, 가압으로 접착한다. 첨가제가 사용될 수도 있다.

(IJ) 초음파식 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ultrasonic welding)

접합될 부분을 한데 합쳐서 초음파 진동으로 접합되도록 한다. 이 공정은 보통의 용접 기술로는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나 합금의 접합을 가능하게 하고, 금속의 박(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금속의 부분품, 플라스틱 필름의 용접을 가능케 한다.

*
* *

전기식 납땀용 기기 · 용접용 기기 · 땀질용 기기는 보통 직류 발전기에서 저전압의 직류, 강압변압기에서 저전압의 교류를 공급받는다. 변압기 등은 보통 기계에 결합되어 있거나, 때로는(예: 어떤 종류의 이동성 기계) 용접헤드나 용접기기가 전선에 의하여 변압기 등에 연결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압기 등이 **그와 관련된** 용접헤드나 용접기기와 함께 제시하였다면 전체의 장치가 이 호에 분류한다.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변압기나 발전기는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제8502호나 제8504호).

또한 이 호는 특히 용접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로봇(robot)을 포함한다.

이 호는 또한 다음을 **제외한다**.

- (a) 전기용접기기를 갖춘 포장기계(제8422호)
- (b) 퓨징프레스(fusing press)(제8451호)
- (c) 오직 절단용으로만 설계된 기계(일반적으로 제8456호)
- (d) 마찰용접기계(제8468호)
- (e) 반도체 조립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납땜용(soldering) 기기·땜질용(brazing) 기기·용접용 기기(제8486호)

(II)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이들 기기는 전기아크 기기로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녹임과 동시에 이들을 압축공기로 분사한다.

이 호는 별도로 제시된 제8424호의 금속분사피스톨(pistol)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특히, 이들 기기는 토치 포인트(torch point)와 원자수소 수동(手動)식 용접장치용 노즐세트는 물론 납땜헤드와 집게·전극홀더·금속접촉전극(예: 접촉 포인트·롤러·조오)를 포함한다.

다만, 이 호는 다음을 **제외한다**.

- (a) 비(卑)금속이나 금속탄화물체의 소모성 전극(경우에 따라 구성 재료에 의하여 분류하거나, 제8311호에 분류한다)
- (b)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전극(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545호)

85.16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21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516.29 -- 기타

-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8516.31 -- 헤어드라이어

8516.32 -- 그 밖의 이용기기

8516.33 -- 손 건조기

8516.40 - 전기다리미

8516.5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8516.60 - 그 밖의 오븐, 쿠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

-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8516.72 -- 토스터

8516.79 -- 기타

8516.80 - 전열용 저항체

8516.90 - 부분품

(A)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가이저(geyser)** : 물이 통과하여 흐르면서 가열한다.
- (2) **저장식 물 가열기(storage water heater)**(압력식인지에 상관없다) : 즉, 투입식 가열기를 갖춘 단열된 탱크이다. 이 가열기에서 물을 서서히 가열한다.
- (3) **이중식 가열기(dual-system heater)** : 물을 전기식으로 가열하거나 연료 가열식 온수 장치에 연결함으로써 가열하며 ; 때때로 다른 가열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할 때에만 전기식으로 작동하도록 온도조절기가 갖추어져 있다.

(4) **전극형 온수보일러(electrode hot water boiler)** : 이 장치에 있어서는 두 전극간을 통하여 교류가 물 속을 흐른다.

(5) **투입식 가열기(immersion heater)** :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이며, 보통 탱크·통 등에서 액체·반유체(고체이외의 것)의 물질이나 기체를 가열하는데 쓰인다. 또한 포트·팬(pan)·큰컵·컵·욕조·비커(beaker)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단열 손잡이와 가열기를 용기 안에 걸기 위한 고리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기계적 압력과 액체·반유체(고체 이외의 것) 물질과 기체의 침투에 저항력이 강한 강화 보호 외장을 갖추고 있다. 외장 안에 절연성과 보온성이 좋은 분말(보통 산화마그네슘)이 들어 있어 선 저항기(전기저항)를 제 위치에 있도록 하며 전기적으로 차단한다.

탱크·통이나 그 밖의 용기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투입식 가열기로 구성되는 조립품(assembly)은 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19호**에 분류한다(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정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태양열 물 가열기도 제8419호에 분류한다.

(6) **끓는물 생산용 전기기기(electric equipment for producing boiling water)**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는 **제8403호**에 분류한다.

(B) 난방기와 토양가열기(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저장식의 전기가열기(electric storage heating apparatus)** : 전열체(electric element)가 고체(예: 벽돌)나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주변의 대기에 계속적으로 발열한다.

(2) **전기식 난방기(electric fire)(팬 가열기와 방사가열기)** : 포물선모양의 반사기를 갖추고 때때로 팬을 내장한 휴대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들 난방기의 대부분은 석탄이나 목탄용의 난방기와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착색램프와 플리커장치(flicker device)를 갖추고 있다.

(3) **전기식 라디에이터(electric radiator)** : 전열체가 라디에이터(radiator) 내에서 순환되는 액체(예를 들면, 기름)를 가열하여 주변의 대기에 열을 방사하는 장치이다.

(4) **대류식 가열기(convection heater)** : 대류작용에 의하여 때로는 팬을 병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킨다.

(5) **가열판(heating panel)** : 천장 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공공장소·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panel)을 포함한다.

(6) **자동차·철도객차(railway coach)·항공기 등에 사용하는 가열기**[제상기(除霜機 : defroster)나 제무기(除霧機 : demister)를 제외한다]

(7) 서리의 형성 방지용 **로드 히팅 장치(road heating equipment)**와 특히 식물성장 촉진용으로 사용하는 **토양가열장치** : 보통 그 전열체는 땅에 묻혀 있다.

(8) **엔진히터(engine heater)** :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 밑에 부착하는 것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는 **제8403호**에 분류한다.

(C) 전기가열식 이용기와 손 건조기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헤어드라이어(hair dryer)** : 후드형의 드라이어(drying hood)와 피스톨(pistol)형의 손잡이와 팬이 내장된 것을 포함한다.
- (2) **헤어컬러(hair curler)**와 **전기식의 퍼머넌트 웨이브장치(electrical permanent waving apparatus)**
- (3)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 (4) **손 건조기(hand dryer)**

(D) 전기다리미(electric smoothing iron)

이 그룹에는 가정용·양복재단사용·양재사용인지에 상관없이, 전선이 없는 다리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리미를 포함한다. 전선이 없는 다리미는 전열체를 갖춘 다리미와 주배선에 접속될 수 있는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그 다리미는 위에서 서술한 스탠드에 놓일 때만 전류를 통과한다. 또한 이 그룹은 물 용기를 내장했는지나 스팀파이프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전기스팀 다리미를 포함한다.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 중의 어떤 것은 이 해설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예: 전기식 난방기·가이저(geyser)·헤어드라이어·아이론 등]. 이 외에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1)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 (2) 그 밖의 오븐과 쿠키(cooker)·조리판·보일링링(boiling ring)·그릴러(griller)·로스터(roaster) (예: 대류식·저항식·적외선식·고주파유도식·결합된 가스 전기장치)
- (3) 커피나 티 메이커[퍼콜레이터(percolator)를 포함한다]
- (4) 토스터(toaster) : 빵을 굽는데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또한 감자와 같은 작은 것들도 구울 수 있는 토스터-오븐(toaster-oven)을 포함한다.
- (5) 당관·끓임 냄비·스티머(steamer) ; 밀크·수프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런(jacketed urn)

- (6) 크레이프 제조기
- (7) 와플 굽는 틀(waffle iron)
- (8) 식기 예열기와 음식물가열기
- (9) 소테냄비(sauté pan)와 칩냄비(chip pan)
- (10) 커피 볶는 기기
- (11) 병 가열기
- (12) 요구르트와 치즈 제조기
- (13) 저장물 조제용 살균기
- (14) 팝콘조리기
- (15) 얼굴건조기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 (16) 얼굴사우나기(얼굴피부관리용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얼굴마스크를 갖추고 있다)
- (17) 타월건조기와 뜨거운 수건용 가로대(heated towel rail)
- (18) 침대의 난방기
- (19) 향수용과 향용의 가열기와 살충제 분무용의 가열기
- (20) 비기계식 워시보일러(wash boiler)

이 그룹에서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a)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나 그 밖의 전기식의 착용품(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 (b) 롤러형 다림질기(제8420호)와 의류용 다림질기나 프레스기(제8451호)
- (c)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나 밀크탕비기·소테냄비와 칩 냄비(예를 들면, 칩가게에서 사용하는 것)과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밖의 전열기기(제8419호 등)
- (d) 공업용 마이크로웨이브 노(爐 : furnace)·오븐·기기[예: 식당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형태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제8514호)
- (e)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제8543호)
- (f) 전열체를 갖춘 가구(예: 린넨찬장과 서빙용 트롤리)(제94류)
- (g) 담배용 라이터·가스라이터·이와 유사한 것(제9613호)

(F) 전열용 저항체(electric heating resistor)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하는 특수재료의 봉(bar)·판(plate) 등이나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 모양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 가지(특수합금, 탄화규소를 기초로 한 합성물 등)를 사용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인쇄 공정에 의해 개별 구성요소의 형태로 얻어지기도 한다.

선의 저항체(wire resistor)는 보통 절연체(예: 도자·동석·운모·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나 유연한 절연코어(예: 유리섬유제나 석면제의 것) 위에 부착되어 있다.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저항선은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코일 모양이나 그 밖의 전열저항체로서 인정되는 모양으로 만든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봉과 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길이나 크기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항체는 어떤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와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 다리미용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와 전기요리용 플레이트(plate)].

이 호에서는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도 제외한다. 이들은 윈드스크린(wind screen)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프레임(frame) 내에 장치한 저항선으로 되어 있다(제8512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17.13 -- 스마트폰

8517.14 --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으로 한정한다)

8517.18 -- 기타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 기지국

8517.62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517.69 -- 기타

- 부분품

8517.71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17.79 -- 기타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I)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유선전화기

유선전화기는 음성을 다른 기기로 보내기 위하여 전송용 신호로 변환하는 통신기기이다. 신호를 수신하면, 유선전화기는 그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한다.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송화기(transmitter)** : 음파를 변조된 전류로 변환시키는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다.

(2) **수화기(receiver)**(헤드폰이나 이어폰) : 변조된 전류를 음파로 다시 변환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송화기와 수화기는 핸드 세트로 알려진 한 개의 성형물에 조립되어 있다. 다른 경우에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헤드폰과 마이크로폰과 조합하여 사용자의 머리에 쓰도록 설계되어 있다.

- (3) **잡음 방지회로(anti-sidetone circuit)** : 송화기에 유입된 소리가 같은 핸드세트의 수화기에서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 (4) **명종(鳴鐘 : ringer)** : 호출정보를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소리를 전자(電子)적으로 생산하는 톤(tone) 명종과 벨이나 부저와 같은 기계적인 명종이 있다. 일부 전화기는 명종과 결합하여 호출이 착신하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라이트나 램프를 갖추고 있다.
- (5) **스위칭장치(switching device)나 “스위치훅(switchhook)”** : 이것은 통신망으로부터의 전류흐름을 저지하거나 허락한다. 일반적으로 수화기걸이(cradle)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수화기걸이에 놓이는 핸드세트에 의하여 작동한다.
- (6) **다이얼 선택기(dialling selector)** : 호출자가 접속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선택기는 버튼 누름식이나 키패드(keypad : tone)식이거나 드럼이나 회전식[펄스(pulse)]이다.

별도로 분리되어 제시하였을 경우, 마이크로폰과 수화기(핸드세트로서 조합여부에 상관없다)와 확성기는 **제8518호**에 분류하며, 벨과 부저는 **제8531호**에 분류한다.

전화기 세트는 전화번호 저장과 재 호출용 기억장치 ; 다이얼링한(dialled) 전화번호와 착신한 호출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일과 시간, 기간을 볼 수 있는 가시 표시기 ; 핸드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통화 가능한 별도의 확성기와 마이크로폰 ; 자동 응답 장치(녹음한 통신문을 전달하거나 착신한 통신문을 녹음하거나 명령에 의해 녹음된 통신문을 재생한다) · 다른 전화기의 가입자와 통화 도중에 그 회선을 대기시키는 장치가 조립되어 있거나 갖추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치가 조립된 전화기 세트는 작동이 가능하게 하는 열쇠나 누름식 버튼을 갖고 있으며 핸드세트를 전화기대(臺)에서 분리하지 않고 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위칭 키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들 중 상당수는 작동을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나 디지털집적회로가 활용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전화기를 분류한다.

- (i) 코드리스(cordless) 전화기 세트 : 다이얼링(dialling) 선택기 · 스위칭 키 · 라디오 주파수 휴대용 소형 무선전화기 기초 기기가 조립되어 전화 통신망과 유선으로 연결된 건전지 전원 라디오 주파수 휴대용 소형 코드리스 핸드세트를 포함한다(또 다른 코드리스 세트는 핸드세트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휴대용 혼합 건전지 전원 라디오 주파수 소형 무선전화기와 연결된 결합형 헤드폰과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다이얼링 선택기, 스위칭 키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 (ii) 결합된 다이얼링(dialling) 선택기와 스위칭 키 유닛(전화통신망과 유선으로 연결한다)과 조합된 헤드폰과 마이크로폰(microphone)이 함께 제시된 전화기 세트

(B)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telephone for cellular network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하거나 발생시킨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셀룰러 전화기(cellular phone)나 휴대형 전화기(mobile phone)
- (2) 위성 전화기

(II)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A) 기지국(base station)

가장 일반적인 기지국의 형태는 셀룰러 전화기로부터나 그 밖의 무선네트워크로 무선파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셀룰러 통신망의 것이다. 모든 기지국은 지리적인 구역(셀)을 커버한다. 사용자가 전화를 하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통화권은 지체없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자동 전달된다.

(B) 엔트리폰 시스템(entry-phone system)

이 시스템은 대개 전화핸드세트와 키패드나 확장기·마이크로폰(microphone)·키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여러 명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원하는 키를 눌러서 입주자를 호출하여 대화할 수 있다.

(C) 비디오폰(videophone)

건물용 비디오폰은 유선전화통신용 전화기 세트와 텔레비전 카메라와 텔레비전 수신기(유선에 의한 전송)를 주로 하여 구성된 결합체이다.

(D) 제8443호의 팩시밀리(facsimile) 기기를 제외한 전신 기기

이들 기기는 주로 문자·그래픽·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적당한 전기적 임펄스(impulse)로 변환시키고, 이들 임펄스를 전송하며 수신단에서는 이들 임펄스(impulse)를 수신해서 문자·그래픽·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상징하는 약정한 신호나 표시로 변환시키거나 문자·그래픽·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 그 자체로 변환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예를 들면

- (1) **메시지 송신용의 기기** : 다이얼(dial)식이나 키보드식 송신기와 자동 송신기(예: 텔레프린터나 텔레타이프라이터 송신기)
- (2) **메시지 수신용의 기기**(예: 텔레타이프라이터 수신기) : 어떤 경우에는 수신기와 송신기가 하나의 송수신기로 결합되어 있다.
- (3) **사진 전신 기기(picture telegraphic apparatus)** : 이 기기(영상전신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보조적인 사진용 기기(예: 현상장치)는 **제90류**에 분류한다.

(E) 전화용(telephonic)이나 전신용(telegraphic) 교환기(automatic switching apparatus)

(1) 자동 교환대와 교환기(automatic switchboard and exchange)

이것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다. 스위칭 시스템의 핵심 특징은 부호화된 신호에 응답해서 사용자 간을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자동 교환대와 교환기는 회로 스위칭과 전달문 스위칭에 의해 작동하거나 전자적 수단(전자적 수단에 의해 사용자간을 연결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microprocessor)를 활용하는 패킷(packet) 스위칭에 의해 작동한다. 많은 자동 교환대와 교환기는 아날로그의 디지털 변환기·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자료압축/압축해제장치(부호기)·모뎀(modem)·다중교환장치·자동자료처리기계·통신망을 통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모두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치들로 조립되어 있으며 말·그 밖의 소리·문자·그래픽·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집적하여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자동 교환대와 교환기 중 어떤 형태의 것은 근본적으로 호출기 세트로부터 수신한 임펄스(impulse)에 부응하는 유선을 선택하고 연결을 완성해 주는 **선택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호출 세트에서 발하는 임펄스에 의해 직접 작동하거나 **디렉터(director)**와 같은 보조기기에 의해 작동한다.

여러 형태의 선택기(사전선택기·중간선택기·최종선택기)와 이곳에 사용하는 디렉터는 종종 금속랙(rack)에 교환기를 조립하여 넣은 새시(chassis)에 같은 형태의 시리즈(series)와 그룹(group)으로 조립되어 있다. 특히 소형의 설비에 있어서는 자동 교환기를 자체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전부를 단일 랙(single rack)에 탑재하기도 한다.

또한 자동 교환대와 교환기는 단축 다이얼링(abbreviated dialling)·호출대기·호출발송·다중호출·음성우편 등과 같은 편의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편의기능은 전화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자의 전화기 세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것들은 공적(公的) 통신망이나 공적(公的) 통신망에 연결된 사적(私的)지국교환기(PBX : private branch exchange)를 이용하는 사적(私的) 통신망에 사용한다. 또한 자동 교환대와 교환기는 운영자의 조정이나 점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전화기 세트와 유사한 콘솔(console)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2) 비(非)자동식 교환대와 교환기(non-automatic switchboards and exchange)

이것은 여러 가지의 수동(手動) 스위칭 장치를 탑재한 프레임(fram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기는 교환대나 교환기에 의해 수신된 각각의 호출을 운영자가 수동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이 기기는 호출이 진행 중이거나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호출(call)”이나 “종료(clear)” 표시기와 ; 운영자의 전화기 세트(가끔 특별하게 탑재한다) ; 스위칭 장치[코드(cord)와 연결된 잭이나 소켓(socket)과 플러그(plug)를 탑재한다] ; 플러그와 코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자가 호출자에게 답하거나 호출절차를 감독하고 교환을 완성하는 것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는 키 스위치(key switch)로 구성되어 있다.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and radio-telegraphy)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고정기기(송신기·수신기·송수신기) : 주로 대형 설비에 사용하는 어떤 형에는 비밀장치(예: 스펙트럼 변환기)와 다중장치(둘 이상의 통신문을 동시에 보내는데 사용한다)와 특정의 수신기["다이버시티 수신기(diversity receiver)"라고 불리며 페이딩(fading)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 수신기 기법을 사용한다]와 같은 특수 장치를 포함한다.
- (2) 다수 언어에 의한 회의에서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을 하기 위한 무선 송신기와 무선수신기
- (3) 선박·항공기 등으로부터의 조난신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송신기와 특수 수신기
- (4) 원격신호의 송신기·수신기·송수신기
- (5) 자동차·선박·항공기·열차 등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
- (6) 보통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수신기 :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수신기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 (3) 라우터(router)·브리지(bridge)·허브(hub)·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
- (4) 다중화 장치와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수신기·전자광학적 변환기)
-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압축해제기)
- (6) 펄스 다이얼 신호(pulse dialled signal)를 음조 신호(tone signal)로 변환하는 펄스 음조 변환기(pulse to tone converter)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팩시밀리 기기(**제8443호**)
- (b) 천공기(穿孔機) : 전기식인지에 상관없이 자동식 전신기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종이테이프 천공에 사용하는 것(**제8472호**)
- (c) 전화나 전신회선회로에 삽입하는 유도코일(**제8504호**)
- (d) 일차전지와 축전지(蓄電池)(**제8506호**나 **제8507호**)
- (e) 전화응답기 : 전화기세트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이 아닌 것으로서, 전화기와 결합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제8519호**)
- (f)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 신호의 송신이나 수신용의 기기(**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
- (g) 전기식의 벨과 표시기[예: 전화기의 다이얼(dial)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명표시기](**제8531호**)
- (h) **제8536호**의 계전기(繼電器)와 개폐장치(예: 자동전화교환기용의 선택기)
- (ij) 개별적으로 피복을 한 섬유로 만든 광섬유 케이블과 전기 절연된 선·케이블 등[교환대용 플러그(plug)가 달린 코드를 포함하며, 접속자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544호**)
- (k) 통신용 위성(**제8802호**)
- (l) 전화호출자동기록기와 카운터(**제90류**)
- (m) 아날로그형이나 디지털형의 자동계측 전송장치와 함께 단일 유닛을 형성하는 반송(伴送)전류 수신기와 송신기나, 후자(디지털형 것)의 것과 함께 제90류의 주 제3호의 의미에 해당하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제90류**)
- (n) 통화시간기록기(calculograph : time recorder)(**제9106호**)
- (o)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소호해설]

소호 제8517.62호

이 소호에는 분리되어 제시하는 코드리스 핸드세트(cordless handset)와 베이스 유닛(base unit)을 포함한다.

85.18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 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8518.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21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518.22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518.29 -- 기타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518.40 - 가청주파 증폭기

8518.50 - 음향 증폭세트

8518.90 - 부분품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 확성기 · 헤드폰 · 이어폰 · 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 · 헤드폰 · 이어폰 ·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이 호에는 또한 전기음향증폭장치(electric sound amplifier set)도 포함한다.

(A)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microphone and stand therefor)

마이크로폰(microphone)은 송신 · 방송 ·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들 기기의 작동원리에 따라서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탄소형 마이크로폰(carbon microphone)** : 이것은 진동판이 음파에 의하여 진동될 때 그 위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에 따라 탄소알갱이의 전기저항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다. 탄소알갱이(또는 가루)는 두 개의 전극간의 용기에 싸여져 있으며 그 전극 중의 하나는 진동판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진동판에 고정되어 있다.
- (2) **압전형 마이크로폰(piezo-electric microphone)** : 진동판에 의하여 송신되는 음파의 압력이 특정 모양으로 절단된 결정조각(예: 석영이나 수정)에 변형을 일으켜서 해당 결정(crystal)에 전하(電荷)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요소는 그 밖의 피아노, 관현악기 등과 같은 가청(可聽)악기를 픽업(pick-up)하는데 사용하는 콘택트(contact)형의 마이크로폰에 자주 사용한다.
- (3) **가동코일(moving coil)이나 리본형(ribbon)의 마이크로폰(microphone)**[또한 동적 마이크로폰(dynamic microphone)으로 알려져 있다] : 음의 진동이 자계(磁界) 내에 있는 코일이나 알루미늄 리본을 움직이게 하여서 유도에 의하여 전기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 (4) **정전용량형(靜電容量型 : capacitance)이나 정전형(靜電型 : electrostatic)[콘덴서(condenser)]의 마이크로폰(microphone)** : 일때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때는 진동(진동판)될 수 있도록 된 두 개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두 개의 판 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두 개의 판 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5) **열선형의 마이크로폰(thermal or hot wire microphone)** : 가열된 전열저항선을 갖는 것으로서 음파의 작용으로 그 온도가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그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호는 또한 무선 마이크로폰 세트[각 세트는 무선 수신기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폰(microphone)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포함한다. 무선 마이크로폰은 무선송신용 회로와 내외부의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음파를 신호로 바꾸어 송신한다. 수신기는 전송된 무선전파(radio wave)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와 무선전파를 전기적 음성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내부 회로를 갖추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음량 조절기와 출력 플러그(plug)를 갖출 수도 있다.

마이크로폰(microphone)에는 많은 서로 다른 용도의 것이 있다[예: 확장장치 ; 전화 ; 녹음 ; 항공기나 잠수함의 탐지기 ; 트렌치 리스닝(trench listening) 장치 ; 심장박동 연구장치].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microphone)에서 출력되는 전류는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이나 아날로그의 디지털 변환기를 갖추고 있는 일부 마이크로폰은 출력되는 전류가 디지털 신호의 형태이다. 마이크로폰은 때때로 증폭기를 접속시킴으로써 보다 더 높은 감도가 주어지는 것이다[보통 사전증폭기(pre-amplifier)를 말한다]. 축전기(capacitor)는 때에 따라서 음질조정용으로 부착되어 있다. 어떤 마이크로폰은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력은 믹싱 콘솔(mixing console)이나 녹음기로부터 공급되거나 독립된 전력 팩(power pack)의 형태일 수 있다. 별도로 제시하는 전력 팩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8504호**에 해당한다). 마이크로폰에는 또한 종종 음파를 집중시키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확장장치용의 마이크로폰의 경우와 같이 테이블·책상 등이나 지상에 설치하기 위한 특수한 **대(臺)**가 갖추어져 있거나 그 **대(臺)**에 매달려 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臺)**나 장치는 분리하여 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마이크로폰과 함께 사용하거나 마이크로폰에 부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종류의 것인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한편,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9620호)**.

(B) 확성기(loudspeaker)[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을 포함한다.

-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 moving iron)이나 가동코일형(moving coil)의 확성기** :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軟鐵)로 만든 전기자(armature)나 리드(reed)가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며 전기자나 리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가동(稼動)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coil)로 되어 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
- (2) **압전형 확성기(piezo-electric loudspeaker)** : 어떤 종류의 천연이나 인조의 수정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수정이 기계적 변형을 받는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러한 확성기는 보통 “수정확성기(crystal loudspeaker)”로 불리고 있다.

(3) **정전형 확성기(electrostatic loudspeaker)**[또한 **콘덴서형(condenser-type) 확성기**로 알려져 있다] : 이것은 두 개의 판(전극)간에 있어서의 정전 반발력에 의한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방의 판은 진동판으로서 작용한다.

정합용(整合用 : matching)의 변압기와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샴시(chassis) 위나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구조물·샴시(chassis)·상자 등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면 주로 확성기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 제94류에 열거한 가구류로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확성기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94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분리하여 제시하는 자동차료처리기계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확성기를 포함한다.

(C) 헤드폰(headphone)과 이어폰(earphone)[마이크로폰(microphone)이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loudspeaker)로 구성된 세트

헤드폰과 이어폰은 저 강도 음향신호(low-intensity sound signal)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음향수신기이다. 앞에서 설명한 확성기와 같이 이들 기기는 전기 효과를 음향 효과로 변환시키며 ; 사용하는 방법은 두 경우 동일하며 단지 사용한 동력의 차이이다.

이 호는 전화나 전신용 헤드폰·이어폰[마이크로폰(microphone)과 결합되었는지 상관없다] ; 특수한 목(throat) 마이크로폰과 영구고정 이어폰(예를 들면, 항공용으로 사용)으로 구성된 헤드세트 ; 전화용 마이크로폰세트/스피커세트가 결합된 유선전화 핸드세트(일반적으로 전화교환원이 사용한다) ; 라디오·텔레비전 수상기와 음성재생장치, 자동차료처리장치에 끼울 수 있도록 된 헤드폰과 이어폰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개인 청취용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세트는 음향 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 청취기기도 포함하는데 그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microphone)·헤드폰·확성기·원추형스피커·전원스위치/소리조절부·배터리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기기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 이기기는 음성기록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기는 비(非) 의료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내과·외과·수의과의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형태의 전자진단기기는 **제9018호**에 분류한다.

(D) 가청주파증폭기(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

가청주파증폭기는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한다. 대다수의 것은 트랜지스터(transistor)나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에 기초를 두었으나, 소수의 것은 여전히 열전자관에 기초를 두었다. 이들 기기는 일반적으로 주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조입된 전력함에 의하여 전력이 공급되며, 특히 휴대용 증폭기의 경우에는 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나 배터리로부터 공급받는다.

가청주파증폭기로의 입력신호는 마이크로폰·레이저 광학 디스크 판독기·픽업카트리지·자기테이프용 헤드·레이디오 피더 유닛(radio feeder unit)·필름녹음대용헤드나 그 밖의 몇 개의 가청주파수에 의한 전기 신호원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출력을 확성기에 공급하지만, 모든 경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사전증폭기(pre-amplifier)는 다음의 증폭기로 공급하거나 증폭기에 내장할 수 있다].

가청주파증폭기는 증폭기의 이득(gain)을 변경시키는 음량조정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키는 조정기[저음 강화(bass boost), 고음 상승(treble lift) 등]도 갖추고 있다.

이 호에는 전화의 중계기나 측정증폭기로서 사용하는 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분류한다. 또한 오디오믹서와 이퀄라이저는 제8543호에 분류한다.

(E) 음향 증폭세트(electric sound amplifier set)

이 호에는 마이크로폰(microphone)·가청주파증폭기와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 세트도 포함한다. 이러한 형의 장치는 어떤 종류의 악기 등과 함께 공공홍행장·공공강연장·선전차·경찰차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비슷한 기기들은 대형의 트럭[특히 트레일러(trailer)를 갖춘 것]에서 운전수로 하여금 기관의 소리 때문에 들을 수 없는 뒤로부터의 불규칙한 소음이나 신호음을 들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헤드폰을 부착한 비행사용의 모자[마이크로폰(microphone)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제6506호)
- (b) 전화기(제8517호)
- (c)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예: 실리콘 마이크로폰 안에 사용된 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MEMS) 센서](제8541호)
- (d) 제9021호의 보청기(hearing aid)

85.19 -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519.3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 그 밖의 기기

8519.81 --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8519.89 -- 기타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광학 매체·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한다.

음성 기록기기(sound recording apparatus)는 **음성 재생기기**가 원래의 음파(말소리, 음악 등)를 재생할 수 있도록 기록 매체를 수정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나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에서 다운로드 받아 디지털 오디오 장치(예: MP3 플레이어)의 내부 메모리(예: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 사운드 파일의 녹음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음성을 디지털 코드로 녹음하는 장치는 녹음된 디지털 코드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기능이 없으면 음성을 재생할 수 없다.

(I) 코인(coin)·은행권(banknote)·은행카드(bank card)·토큰(token)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means of payment)으로 작동하는 기기

이 기기는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하며 오디오 녹음을 선택한 순서대로나 임의로 선택하여 재생한다. 보통 “**주크박스(juke box)**”라고 칭한다.

(II) 턴 테이블(turntable)[레코드 데크(record-deck)]

이 기기는 원반(disc)을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회전시키는 것으로서 사운드 헤드(sound-head)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음향장치나 전기식의 음성증폭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아래 “**레코드 플레이어(record player)**” 참조). 여기에는 음반이 연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자동장치가 부착될 수 있다.

(III) 전화응답기(telephone answering machine)

이 기기는 전화기와 접속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단, 전화기와 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전송하며, 때로는 전화호출자가 남긴 메시지를 녹음하기도 한다.

(IV) 자기(磁氣)식·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이 그룹에 속하는 기기들은 휴대용일 수도 있다. 음향 장치(확성기·이어폰·헤드폰)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

(A) 자기 매체(magnetic media)를 이용한 기기

테이프나 그 밖의 자기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를 이 그룹에 포함한다. 매체의 자기적 특성을 변화시켜 음성을 녹음한다. 매체를 자기 사운드헤드(sound-head)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 소리를 재생한다.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레코더와 카세트 레코더가 그 예이다.

(B) 광학 매체(optical media)를 이용한 기기

광학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를 여기에 포함한다. 음성이 가변 강도를 가진 증폭된 전류(아날로그 신호)에서 변환된 디지털 코드로 녹음 매체 표면에 녹음한다. 음성은 그러한 매체를 읽어 내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생한다. 예로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compact disc player)와 미니 디스크 플레이어(mini disc player)가 있다. 자기 기술과 광학 기술을 결합한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도 여기에 포함한다. 그러한 기기의 예로는 자기 광학 디스크를 이용하는 기기가 있다. 이 기기는 녹음할 때에는 자기 기술로 반사도가 다른 영역을 만들고 광학적인(예: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이를 읽어 낸다.

(C)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를 이용한 기기

이 그룹은 반도체(예: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음성이 가변 강도를 가진 증폭된 전류(아날로그 신호)에서 변환된 디지털 코드로 녹음 매체에 녹음한다. 그러한 매체를 읽어 음성을 재생한다. 반도체 매체는 기기에 영구적으로 내장되기도 하고 탈착이 가능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저장 매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래시 메모리 오디오 플레이어(예: 특정의 MP3 플레이어)가 있다. 이것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기기로서 플래시 메모리(내장이나 탈착),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가청주파 증폭기·LCD 스크린·조종 버튼을 포함하는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 하우징(housing)으로 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MP3 같은 형식의 파일을 재생하도록 프로그램한다. 이 기기는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와 연결되어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D) 자기(磁氣)식·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가 조합된 기기

이 기기는 자기식·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 중 두 개 이상을 이용하여 녹음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다.

(V) 그 밖의 음성 녹음(recording)용 기기·음성 재생(reproducing)용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기기들을 포함한다.

- (1) **레코드 플레이어(record player)** : 전기식 증폭기와 확성기에 의하여 레코드[취입된 디스크(grooved disc)]로부터 음을 재생하는 것으로서 기계적 진동은 사운드 헤드(픽업 카트리지)에 의하여 전기적 진동으로 변환한다. 여기에는 음반이 연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자동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2) **영화용 음성 녹음용 기기(cinematographic sound recording apparatus)** : 이 호의 영화용 음성 녹음용 기기는 음성을 **광전(光電)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음성이 필름 위에 (a) 면적을 변화시키는 스트립(strip)이나 (b) 밀도를 변화시키는 스트립으로서 광전식으로 기록한다.
- 영화용 음성 녹음용 기기는 음성헤드 외에 필름 홀딩용 매거진·필름의 속도를 촬영기의 속도와 동기(同期)로 하는 모터 구동장치와 필름 운송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3) **영화용 음성재생기(cinematographic sound reproducer)** : 광전기식 음성 헤드와 전하 결합소자가 내장된 판독기가 장착되어 있다.
- (4) **재녹음 기기(re-recording apparatus)(영화용으로 한정한다)** : 다른 매체에 자기(磁氣)식·광학(光學)식·전자(電子)식으로 저장된 배경음악을 광전기식이나 디지털식으로 녹음하는 데 사용한다.

*
* *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녹음이 끝난 광디스크를 복제하는 데 사용되는 프레스나 사출 성형기기(**제8477호**)
(b) 전화기와 일체를 구성하는 전화응답기(**제8517호**)
(c) 분리하여 제시된 마이크로폰(microphone)·확성기·가청주파 증폭기·음향증폭세트(**제8518호**)
(d) **제8521호**의 녹음이나 재생 장치
(e)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제8527호**)
(f) 텔레비전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제8528호**)
(g) 음성 녹음이나 수신기기가 장착된 영화용 카메라와 프로젝터(projector)(**제9007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519.81호

이 소호에는 자기(磁氣)·광학·반도체 매체 중 하나나 그 이상을 사용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85.20]

85.21 -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 - 마그네틱 테이프형

8521.90 - 기타

(A) 기록용 기기와 기록용 기기/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

이것은 텔레비전 카메라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였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과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이들의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 일반적으로 영상과 음성은 같은 매체에 기록한다. 기록방법은 자기적이거나 광학적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며 보통 기록매체는 테이프와 디스크이다.

또한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기를 포함한다(예: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

테이프상에 자기적 기록을 함에 있어서 영상과 음성이 테이프상에 다른 트랙에 기록하는 반면 디스크상에 자기적 기록을 함에 있어서는 영상과 음성이 자기형식으로 기록하거나 디스크 표면상의 나선형 트랙 안에 있는 점으로 기록한다.

광학적 기록에 있어서 영상과 음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료는 레이저에 의해 디스크상에 암호화한다.

또한 텔레비전 수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비디오 기록 기기는 텔레비전 송신소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의 주파수대(帶)에서 원하는 신호(또는 채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튜너(tuner)를 갖추고 있다.

재생용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기는 기록을 영상 신호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신호는 송신소나 텔레비전 수신기에 보내진다.

(B) 재생용 기기

이러한 기기는 단지 영상과 음성을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에 사용하는 매체는 특별한 기록 장치에 의해 기계적·자기적·광학적으로 미리 기록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영상과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장되고, 레이저광선판독장치·용량센서·압력센서·자기헤드에 의하여 수집된 디스크를 사용하는 기기.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영상과 음성 모두의 기록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
- (2) 감광성(感光性) 필름에 기록데이터(음성은 동일한 필름에 자기적 방식으로 기록한다)를 해독하고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8523호**에 해당하는 기록용 매체
- (b) 비디오 카메라(**제8525호**)
- (c) 텔레비전용 수신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나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와 비디오 모니터와 비디오 프로젝터(projector)(**제8528호**)

85.22 -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 픽업 카트리리지

8522.90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519호나 제8521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픽업 카트리리지(pick-up cartridge)** : 디스크용이나 기계적으로 녹음된 음성필름용으로 기계적 진동[녹음매체 홈(groove)에 따라 움직이는 바늘(stylus)에서 얻어지는]을 전기적 신호(impulse)로 변환시켜 준다.
- (2) **레이저 광학식 판독장치(laser optical reading system)**
- (3) **자기형(magnetic type) 사운드헤드(sound-head)** : 기록용·재생용·소거용으로 사용한다.
- (4) 휴대용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의 내용을 자기 테이프 플레이어를 통하여 음성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카세트형 어댑터(cassette shaped adapter)**
- (5) **광전식(photoelectric) 사운드헤드(sound-head)**
- (6) **테이프를 감거나 푸는 기기(apparatus for winding or unwinding tape)** : 본래 이러한 기기는 브래킷(bracket)을 지지(支持 : support)하는 두 개의 릴(reel) 받침대로 구성되며, 적어도 그 중의 하나는 회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 (7) **턴테이블용(turntable)의 톤 암(tone-arm)과 테이블**
- (8) **축음기의 바늘용(styli)으로 가공한 사파이어(sapphire)와 다이아몬드(diamond)(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9) **레코드 커터(record cutter)** : 녹음기기의 구성부분품으로서 음향진동을 기계적으로 변환시키고 음구(音溝)의 형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 (10) 녹음기기용이나 재생기기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furniture)**
- (11) 음성이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의 자기헤드(magnetic head)를 **세정하는데 사용하는 카세트** : 세정용 용액과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12) **자기식 녹음기기(magnetic sound recording)와 자기식 재생기기의 그 밖의 전용부분품과 부속품** : 예: 자기소거용 헤드와 바, 자기소거기 ; 자기침 ; 한계지시용 스케일 등이 있다.
- (13) **비디오 기록기나 재생기의 그 밖의 전용부분품과 부속품** : 예를 들면, 비디오신호기록용 헤드 드럼 ; 자기테이프를 기록헤드나 픽업(pick-up)에 밀착시키기 위한 진공장치 ; 테이프 권취장치 ;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스푼(spool)·릴(reel)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지지대(마그네틱테이프가 감겨있지 않은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를 포함한다)(그 구성 재료에 따라, 예를 들면, **제39류**나 **제15부**에 분류한다).
- (b) 녹음기나 재생기용의 전동기로서 그러한 녹음기나 재생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것 (**제8501호**)
- (c) 기록용 매체(**제8523호**)
- (d) 동기화(同期化) 테이블(synchronisation table) 위에서 프레임 뷰어(frame viewer)와 함께 사용하는 사운드 헤드(sound-head)를 부착한 장치(**제9010호**)

85.23 -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기식 매체

8523.21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3.29 -- 기타

- 광학식 매체

8523.41 -- 기록이 안 된 것

8523.49 -- 기타

- 반도체 매체

8523.51 --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2 -- 스마트카드

8523.59 -- 기타

8523.80 - 기타

이 호는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그 밖의 영상 자료; 소프트웨어)의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기록·독취기에 삽입되거나 제거되며, 기록·독취기에서 다른 기기로 전송될 수 있다.

이 호의 매체는 기록된 상태, 기록되지 않은 상태, 정보를 사전 기록하였으나 기록된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이 호에는 완성된 기록매체의 대량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중간생산 형태의 매체[예: 매트릭스(matrix)·마스터 디스크(master disc)·머더 디스크(mother disc)·스탬퍼 디스크(stamper disc)]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매체에 자료를 기록하거나 매체의 자료를 독취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물품이 이 호에 포함한다.

(A) 자기식 매체(magnetic media)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디스크·카드·테이프 형태이다. 이들은 다양한 재료(일반적으로 플라스틱·종이나 판지·금속)로 제작되며, 자기재료 형태나 자기재료를 도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테이프레코더용 카세트테이프나 그 밖의 테이프·캠코더나 그 밖의 영상 기록 기기(예: VHS·Hi-8™·미니-DV)용의 테이프·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디스켓과 카드가 있다.

이 그룹에는 자기-광학 매체(magneto-optical media)는 포함하지 않는다.

(B) 광학식 매체(optical media)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나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유리·금속·플라스틱으로 만든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하여 저장한다. 이 그룹에는 재기록 여부에 상관없이 기록된 디스크나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콤팩트 디스크(예: CD·V-CD·CD-ROM·CD-RAM), DVD(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 digital versatile disc)를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자기-광학 매체도 포함한다.

(C)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

이 그룹의 물품은 하나나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이 류의 주 제6호가목 참조] : 이들 기기[“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저장 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로 알려져 있다]는 네비게이션이나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자료 수집 터미널·휴대용 스캐너·의료 감시기기·음성 기록기·개인 통신기·휴대폰·디지털카메라·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외부 소스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이들 기기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료는 특정한 기기와 연결되어진 장치에 의해 저장되거나 독취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다운로드나 업로드 될 수 있다.

이들 매체는 연결된 기기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만 작동되며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휘발성 기억 장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플래시 E²PROM/EEPROM”)를 인쇄 기판 위에 장착된 집적회로 형태로 내장하고 있으며 호스트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소켓(socket)도 장착되어 있다. 축전기(capacitor)·저항기와 마이크로컨트롤러도 집적회로 형태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다.

- (2) **“스마트카드(smart card)”**[이 류의 주 제6호나목 참조] : 칩 모양의 하나나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 프로세서·RAM·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스마트카드는 접속부·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내장한 안테나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能動)이나 수동(手動)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이들 “스마트카드(smart card)”는 이 류의 주 제6호나목을 충족하는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나 태그(tag)”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프록시미티 카드/태그는 일반적으로 인쇄된 안테나에 붙여진 ROM를 갖춘 전자집적회로로 구성된다. 이 카드/태그는 독취기로부터 송신되는 반사되는 신호에 작용하는 안테나의 영역 간섭(field interference)(ROM에 내장된 코드의 결정에 따른 현상) 발생에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형태의 카드/태그는 자료를 전송하지 않는다.

(D) 기타

이 그룹에는 축음기용의 레코드판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하나 이상의 사운드트랙을 지닌 사진용이나 영화용 필름(**제37류**)
- (b) 광전기록용의 감응식 필름(**제3702호**)
- (c)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 기록용 매체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물품. 이들 물품은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예: **제39류**·**제48류**, **제15부**).
- (d) 데이터를 함유하는(data-bearing)용 종이테이프나 펀치카드 : 기록은 보통 천공에 의해 이루어진다(**제48류**).
- (e) 제16부의 주 제2호에 따라 분류하는 어떤 형태의 전자 메모리 모듈[예: SIMMs(단일 인라인 메모리 모듈 : Single In-Line Memory Modules)와 DIMMs(이중 인라인 메모리 모듈 : Dual In-Line Memory Modules)](이 류 총설 참조)
- (f) 게임기계용 카트리지(**제9504호**)

85.24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것
- 8524.11 -- 액정의 것
- 8524.12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 8524.19 -- 기타
 - 기타
- 8524.91 -- 액정의 것
- 8524.92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 8524.99 - 기타

이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flat panel display module)을 분류하며(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이 류의 주 제7호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발광다이오드(LED)나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flat), 곡선형인 것(curved), 구부러지는 것(flexible), 접을 수 있는 것(foldable), 늘릴 수 있는 것(stretchable)이나 둘둘 말 수 있는(rollable)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liquid crystal)이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두 개의 시트나 판(예: TFT 기관과 컬러 필터 기관) 사이에 놓이게 된다. OLED 셀의 경우에는, 유기 물질을 TFT 기관 위에 증착한다. 그러한 셀은 구동장치(driver)나 제어회로(control circuit)와 같은 전기식 부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전기 접속자(electric connections)를 갖추었는지나 편광판(polarizing plates)을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기(control units)가 추가된다. 모듈은 시각 신호나 그 밖의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ADP 신호, 그 밖의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의 개별적인 픽셀(pixels)을 스위칭하는 구동장치(drivers)(일반적으로 드라이버 IC와, 시각 신호를 드라이버 IC로 접속하는 PCB로 구성되어 있다)나, 디스플레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회로 또는 타이밍 제어회로(control circuits)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LCD용)이나 프레임[채시(chassis)]과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 (3) **터치-감응 방식 스크린을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터치-감응 방식 스크린(touch-sensitive screen)이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에 부착되어 있거나 셀(cell)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것들을 통해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출력[디스플레이(display)]하고 입력할 수 있다.

이 호의 제품은 광범위한 장치(예: 냉장고, 자동자료처리기계, 휴대용 전화기, 이미지나 데이터의 전송·수신 장치,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텔레비전용 모니터나 수신 장치, 승객수송용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로서 다른 장치에 결합되지 않으면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을 갖춘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

다른 기기에 결합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전체를 그 장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제16부 총설 참조), 이 호에 해당하는 장치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 (a) 영상신호 변환 부품을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보통 제8517호, 제8528호와 제8529호의 제품)
- (b)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시각 신호용 기기(표시반)(제8531호)
- (c)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일반적으로 제90류)
- (d)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악기(제92류)
- (e)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제95류의 모든 물품(예: 비디오 게임 콘솔, 완구, 게임, 운동 장비, 스포츠 용구 등)

85.25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 송신기기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8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8525.82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 경화·내(耐)방사선 카메라로 한정한다]

8525.83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8525.89 -- 기타

(A)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 분류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電磁波)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유선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의 송신기기
- (2) 방송을 수신·재송신하며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계용 기기(항공기에 설치되는 텔레비전용의 중계용 기기를 포함한다)
- (3) 안테나와 포물선형 반사 안테나에 의하여 스튜디오나 외부의 방송장소로부터 주송신기까지 송신시키기 위한 중계용 텔레비전 송신기기
- (4) 공업용의 텔레비전 송신기기(예: 떨어져 있는 계기를 읽거나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로는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B)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나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나 전하(轉荷)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추므로써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나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이나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웹캠(webcam)].

텔레비전 카메라용의 이동성 기계장치인 “트래블링(travelling)”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8호)**.

텔레비전 카메라의 원거리 조정용의 전기식 장치와 초점 조정 장치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37호)**.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나 매체에 녹화한다(예: 자기테이프·광학식 매체·반도체식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output terminal)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로부터의 아날로그나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터미널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viewfinder)나 액정표시 장치나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나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 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8517호**의 기기
- (b) 중계기에 내장될 목적으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라디오방송 수신기기(**제8527호**)
- (c)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위성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제8528호**)
- (d) 이 호의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 송신기기가 결합된 특수용도 차량(일반적으로 **제8705호**)
- (e) 통신위성(**제8802호**)

85.26 -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 원격조절기기

8526.10 - 레이더기기

- 기타

8526.91 -- 항행용 무선기기

8526.92 -- 무선 원격조절기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예: 고정되거나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와 라디오 부표 ; 수신기(다용도 안테나나 지향성 프레임(frame)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포함한다.
- (2)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용 레이더장치(선박 · 항공기 등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육상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항만용 레이더 장치와 부표(buoy) · 수로부표(beacon) 등에 설치된 인식장치를 포함한다.
- (3) 공항에서 사용하는 계기착륙유도용의 기기나 교통관제용의 기기 : 이러한 것은 매우 복잡한 기기이다. 어떤 형에는 근접하여 있는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를 관제지점에 표시하며 또한 착륙에 필요한 지시와 함께 부근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레이더 상(radar picture)을 항공기에 송신하기 위한 보통의 라디오, 레이더와 텔레비전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 (4)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 (5) 폭풍우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상용 레이더나 기상용 기구
- (6) 무차별폭격장치
- (7) 포탄이나 폭탄이 목표에 접근되었을 때 폭발되도록 되어 있는 신관(信管)장치에 사용하는 레이더장치
 너관을 갖춘 완전한 신관(信管)은 제9306호에 분류한다.
- (8) 항공기침입경계용의 레이더장치
- (9) 함포나 고사포의 사정(射程)과 방향탐지용의 레이더장치
- (10) 레이더 트랜스폰더(radar transponder) ; 이것은 레이더 펄스를 수신하여, 그것을 수신하는 펄스에 응답하는 통신내용을 담은 반송펄스를 때때로 송신하는 것이다. 트랜스폰더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레이더의 조작자에게 식별 가능한 펄스를 입수하게 하며 또한 계측용 기구에서 분포와 방향을 결정하여 그 기상정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11) 선박 · 무인비행기 · 로켓 · 미사일 · 장난감 · 모형선박 · 항공기 등의 무선 원격조절기기
- (12) 광산의 폭파용이나 기계의 무선 원격조절기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 *

레이더나 이 호의 다른 기기를 영구히 부착한 특수용도 차량은 **제외한다**(보통 **제8705호**).

85.27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12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527.13 -- 그 밖의 기기(음성 기록기기나 음성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527.19 -- 기타

-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 외부 전원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 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8527.29 -- 기타

- 기타

8527.91 -- 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8527.92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527.99 -- 기타

이 호에 분류하는 음향 라디오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모든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탁상형·콘솔형·가구나 벽 등에 장착시킨 것이나 휴대형의 것이 있으며, 음성의 기록기기·재생기기나 시계가 동일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기
- (3) **제8525호**의 중계기기의 내장용으로 별도 분리하여 제시한 수신기기
- (4) 포켓 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이 류의 소호주 제4호 참조)
- (5) 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하는 소매용 세트에 포장된 스테레오시스템(하이파이시스템)은 분리된 하우징(housing)에 모듈(module) 유닛으로 구성된다(예: CD플레이어·카세트녹음기·이퀄라이저가 장착된 증폭기·확성기 등과 결합). 라디오 수신기가 스테레오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제8517호**나 **제8525호**의 물품

(b) 이 호의 무선방송 수신기기를 영구히 부착한 특수용도 차량(보통 **제8705호**)

85.28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음극선관 모니터

8528.4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8528.49 -- 기타

- 그 밖의 모니터

8528.5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8528.59 -- 기타

- 프로젝터(projector)

8528.6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8528.69 -- 기타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

8528.72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8528.73 -- 기타(단색)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2)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텔레비전 세트)

(3)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기기(예: 위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 모니터는 그 밖의 형태의 모니터[아래의 (B) 참조],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기와 구별이 가능하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 (i)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 (ii)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 (iii)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iv)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cm(30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 (v)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mm 미만)를 가지고 있다.
- (vi)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vii)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
- (viii)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다.
- (ix) 이들은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 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디자인을 위한 특징을 내장하고 있다.
- (x)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

이 그룹은 복합 비디오, s-비디오나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직접 비디오 카메라나 레코더에 접속하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즉, 모든 무선-주파수 회로가 제거된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방송사(television company)에 의해 사용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용(공항, 철도역, 공장, 병원 등)으로 사용한다. 추가하여, 이들은 붉은 색(R), 녹색(G)과 청색(B)용에 따라 분리하여 입력이 가능하며 특정의 표준(NTSC, SECAM, PAL, D-MAC 등)에 따라 코드화 될 수도 있다. 코드화된 신호의 수신을 위해서 모니터에 R, G, B 신호(의 분리)를 포괄하는 디코딩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커넥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 디자인을 위한 특징도 내장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도 내장하고 있지 않다.

(C) 프로젝터(projector)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1)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CRT)·액정디스플레이(LCD) 등]를 포함하지 않은 텔레비전 방송(지상파·케이블·위성)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modem)을 갖춘 것도 있다.

이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이나 재생기기·모니터·프로젝터(projector)나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기기[이들은 흔히 비디오튜너(video tuner)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에 분류한다.

(2) 공업용의 텔레비전 수신기기(예: 먼 곳에 있는 계기를 읽거나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때로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3) 모든 종류[(액정디스플레이)LCD·플라즈마·음극선관(CRT)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기기(텔레비전 세트)(라디오 방송 수신기기·비디오카세트레코더·DVD 재생기·DVD 기록기·위성 수신기기 등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제8521호**)
- (b) 텔레비전 수신기거나 이 호의 그 밖의 기기를 영구히 설치한 특수 용도의 차량(예: 방송용 차량)(일반적으로 **제8705호**)
- (c) 영화용의 영사기(**제9007호**)와 **제9008호**의 투영기

85.29 -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90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다섯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
- (2)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 장치로서 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마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 (4)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separator)
- (5) 프레임(frame)[채시(chassis)]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안테나 마스트(예: 제7308호)
- (b) 고전압발생기(제8504호)
- (c) 휴대용 전화기라고도 불리는 셀룰러폰용 축전지(제8507호)
- (d) 제8517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제8517호)
- (e) 이어폰과 헤드폰[마이크로폰(microphone)과 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화나 전신용은 물론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될 수 있는 이어폰과 헤드폰용으로 사용한다](제8518호)
- (f) 음극선관과 그 부분품(예: 편향코일)(제8540호)
- (g) 안테나 증폭기와 고주파 진동자 장치(제8543호)
- (h) 텔레비전 카메라용 렌즈와 광학필터(제9002호)
- (ij)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85.30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신호 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8530.80 - 그 밖의 기기

8530.90 - 부분품

이 호에는 철도·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도로·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이나 보트(예: 항구에 정박해 있는)와 항공기(예: 공항에 있는)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작은 부분이 전기식 장치와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기계식으로 조작되는 유사한 기기(예: 전기식의 조명장치를 갖춘 기계식 신호기기,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유압식이나 압축 공기식의 조절기기)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 제8608호에 분류한다.

정지식의 신호는 전기식으로 조명한다고 할지라도(예: 지표로 사용하는 조명패널) 교통관제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해당 호에 분류한다(제8310호, 제9405호 등).

(A) 철도용(railway) 기기·궤도용(tramway) 기기(지하갱내 철도용의 기기를 포함한다)와 공기완충식 철도운송시스템의 기기. 이 기기는 다음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 (1) **신호(signalling)나 안전(safety)기기** : 이것은 신호를 실제로 행하는 부분(보통 몇 가지의 착색조명체, 기둥위 혹은 어떤 종류의 구조물 내에 설치된 가동성의 아암이나 원판·작동장치와 제어장치[수동(手動)식이나 자동식의 것]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신호기기는 정거장·교차점·평면교차 등의 교통관제용이나 동일 선로 구간을 통과하는 많은 열차에 대한 관제용으로 사용한다. 후자의 형에는 열차가 궤도위의 한 선로구에서 다음 선로구로 통과되는 경우에 필요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조작하는 자동선로 구간신호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정거장이나 신호소(경보벨이나 가시 디스플레이에 의하여)에 열차의 위치 또는 접근을 신호하는 기기와 포인트·신호기 등에 의하여 포착되는 열차의 위치를 신호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어떤 형식의 신호기기는 기관차의 운전실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장치와 결합되어 있다. 신호기기의 회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접촉기나 센서는 기관차가 통과할 때에 기관차의 기구를 작동시킨다. 즉 운전자에게 가시나 가청의 경보를 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기관차가 정지 되도록 기관차의 제어작용을 하는 것이다. 기관차에 설치된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궤도제어기기(track control equipment)** : 예를 들면, 포인트를 원격 제어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궤도 위의 각 포인트기의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실제의 작동장치(어떤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포함한다)와 여러 곳에 집중되어 있는 제어장소(신호소 등)에 설치된 제어반과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조차장에 있는 화차를 자동 제어하는 어떤 종류의 복합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몇 개의 큰 조차장에 설비되어 있는 프로그레션 릴레이 저장(progression relay storage)장치와 화차의 이동제어장치[볼 로봇("ball robot")]이다.

(B) 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자동평면교차신호기(automatic level crossing signal)** : 예를 들면, 점멸등·벨·조명식 정지신호이다.

문과 울타리를 조작하기 위한 전기장치도 이 호에 포함한다.

- (2) **교통신호등(traffic light)** : 이것은 보통 교차도로·교차점 등에 설치된 일련의 착색등(coloured light)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신호를 하는 신호등의 장치·제어장치·제어장치의 조작 수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호등은 수동(手動)식(교통순경이나 보행 횡단의 경우에 보행자에 의하여 조작되는 신호등)이나 자동식(시간으로 조작되는 신호등과 길 위에 설치된 광전지나 접촉기에 의하여 차량이 통과할 때에 조작되는 신호등)의 것이 있다.

(C) 항만용·공항용 전기식 교통관계기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자전거나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기식의 조명용 기기와 신호용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12호)**.

85.31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 화재 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 8531.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 8531.2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 8531.80 - 그 밖의 기기
- 8531.90 - 부분품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

정지식의 신호(static sign)는 전기식으로 조명되는 것(예: 램프·랜턴·조명반 등)일지라도 신호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제8310호·제9405호 등).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A) 전기식 벨(bell)·버저(buzzer)·도어차임(door chime) 등 : 벨은 주로 작은 해머를 진동시켜서 벨의 도움을 때리는 전자식의 작동기기로 되어 있다. 버저(buzzer)는 벨에 유사한 것이나 벨의 도움이 없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가정용(예: 도어벨)으로서나 사무소·호텔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 호에는 하나나 그 이상의 금속관을 때려서 음악적인 음이나 일련의 조음을 발하게 하는 전기식의 도어차임과 전기식으로 조작되는 교회의 벨도 포함한다. 다만, 음악연주용의 종은 제외한다(제92류).

전기식의 벨(bell)과 도어차임(door chime)은 보통 저압전원(일차전지)으로 조작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전원의 전압을 강하시키는 변압기가 갖추어져 있다.

(B)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sound signalling apparatus)·혼(horn)·사이렌(siren) 등 : 음향은 전기적인 작용이나 전자 소리발생기로 리드(reed)를 진동시키거나 원반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 여기에는 공업용 사이렌·공습 사이렌·선박용 사이렌 등을 포함한다.

(C) 그 밖의 전기식 신호용 기기(electrical signalling apparatus) : 항공기·선박·열차·그 밖의 차량용(제8512호에 열거된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의 것은 제외한다)의 점멸이나 단속하는 신호등 등이 포함되며, 제8526호의 무선기구나 레이더 기기는 제외한다.

(D) 표시반(indicator panel)과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한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나 방이 비어 있는 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호텔·공장에서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1) **방 표시기(room indicator)** : 방의 번호에 일치하는 번호를 붙인 큰 표시반이다. 특정한 방에 일치되는 단추를 누를 때에 방 번호에 일치되는 번호가 점등되거나 셔터나 플랩(flap)을 내림으로써 밝아지는 것이다.

- (2) **숫자 표시기(number indicator)** : 신호가 작은 상자 위에 조명되는 숫자로 표시하며 ; 이러한 종류의 어떤 기기에 있어서는 호출기구가 전화의 다이얼(dial)에 따라 조작한다. 또한 손으로 다이얼을 회전시킴으로써 숫자가 표시되는 시계형의 표시기도 있다.
- (3) **사무실 표시기(office indicator)** : 예를 들면, 특정 사무실의 사용자가 부재중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형의 것은 사무실의 사용자에게 의하여 임의로 조명되는 간단한 “들어오시오(come in)”나 “예약(engaged)”의 신호만으로 되어 있다.
- (4) **승강기 표시기(lift indicator)** : 이러한 것은 조명판 위에 승강기의 위치와 승강기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 (5)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engine room telegraph apparatus for ship)**
- (6) **정거장용의 표시반(station indicating panel)** : 열차의 발착시각과 발착플랫폼을 표시하는 것이다.
- (7) **경마장(race course) · 축구경기장(football stadium) · 볼링장(bowling alley)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

이러한 표시반 등의 어떤 것에는 벨이나 음향신호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정장소 · 도로 · 구획 · 루트가 각 특정의 단추를 누름으로써 조명되게 하는 도로나 철도의 공공용 지도판이나 전기식의 광고표지판을 포함하지 않는다.

(E) 도난경보기(burglar alarm) :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신호부(벨 · 버저 · 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한다. 예:

- (1) **전기적 접촉(electrical contact)에 의한 것**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가는 선(fine wire)을 끊거나, 세선에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
- (2) **정전용량(靜電容量)의 작용(capacitance effect)에 의한 것** : 이러한 것은 종종 금고와 연결되어 사용하며 ; 이 경우 금고는 축전기(capacitor)의 일개의 판으로 작동되며, 그 정전용량이 어떤 사람의 접근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 전기회로가 단타되어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 (3) **광전(光電)식 장치(photoelectric device)** : 광선(종종 적외선)이 광전지 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 그 광선이 차단될 때에 광전지 회로 내에 전류의 변화가 생겨서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F) 화재경보기(fire alarm) :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 · 버저 · 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가용(fusible)물품(왁스나 특수합금)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 : 온도가 어떤 한계점 이상으로 오르면 가용물품이 용융(鎔融 : melt)되어, 전기접촉이 이루어져서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 (2) **바이메탈(bi-metal)의 스트립(strip)·액체나 기체의 팽창을 이용하는 기기** : 어떤 점 이상으로 팽창하면 경보기가 조작된다. 어떤 형식에 있어서는 기체의 팽창이 실린더(cylinder) 내에 있는 피스톤(piston)을 작동시키며 ; 이 기기에는 완만한 팽창으로 경보를 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온도의 상승으로 팽창이 급격히 이루어질 때에 한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하는 밸브가 갖추어져 있다.
- (3)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저항체의 전기저항변화(variation in the electrical resistance)를 이용하는 기기**
- (4) **광전지(photoelectric cell)를 이용하는 기기** : 광선이 광전지 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기로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흐려지면 경보기를 작동한다. 눈금이 있는 계기나 기록 장치를 갖춘 유사한 기기는 **제90류**에 분류한다.

자동 화재 경보장치뿐 아니라 소방대를 부르기 위해 거리에 설치하는 비자동경보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G) 전기식 증기(vapour) 경보기와 가스(gas) 경보기 : 위험한 가스 혼합물(예: 천연가스·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이나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한다.

(H) 화염경보기(flame alarm)(화염검출기) : 불빛이 일거나 꺼질 때에 계전기(relay)를 통하여 경보기가 작동되는 광전지를 갖추고 있다. 전기식의 음향이나 가시표시의 경보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검출기는 **제8536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스위치와 스위치 패널(간단한 표시등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제8536호**나 **제8537호**)
- (b)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매연 검출기를 갖춘 화재경보기(**제9022호**)
- (c) LCD 모니터나 텔레비전 수신기기(**제8528호**)

85.32 -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 8532.1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 8532.21 -- 탄탈륨의 것
-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 8532.23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 8532.24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 8532.25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 8532.29 -- 기타
- 8532.3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 8532.90 - 부분품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또는 콘덴서)는 원칙적으로 절연 물질(유전체, 예: 공기·종이·운모·기름·수지·고무와 플라스틱·도자기·유리)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의 도전면(導電面: conducting surfa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전기공업의 많은 부문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예: 교류회로의 역률(力率)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유도전동기 내에서 회전 자계를 위한 위상 전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아크(arc)의 영향으로부터 전기접촉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전기량을 저장하거나 방출하기 위하여, 발진회로·주파수여과기와 라디오·텔레비전·전화공업이나 공업용 전자장치에 널리 사용한다).

그 특성(형태·사이즈·정전용량·유전체의 종류 등)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이다. 다만, 이 호에는 어떤 타입·제조방식·용도라도 가능하며 모든 축전기를 포함한다(특히 정밀한 정도 내에서 만들어졌으며 사용 중 일정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실험실용이나 여러 가지 측정기용의 표준축전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샴시(chassis)나 용기 내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된 축전기도 포함한다[예: 필요한 정전용량을 얻기 위하여 많은 표준 축전기를 직렬이나 병렬상태로 함께 접속시켜서 만든 어떤 대형 역률(力率)용의 축전기와 축전기상자].

(A) 고정식 축전기(fixed capacitor)

고정식 축전기는 정전용량을 가변시킬 수 없는 것이다. 고정식 축전기에는 건식 축전기·유침 축전기·가스침지 축전기·유입 축전기와 전해 축전기의 주요한 형이 있다.

- (1) 건식 축전기에 있어서는 극판과 유전체가 보통 적층된 판·압연된 스트립(strip)이나 박(foil)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건식 축전기의 어떤 것은 덮개용의 금속이 고정된 유도체에 화학적 처리나 열처리를 해서 사용한다. 건식 축전기는 클램프로 장비된 박스 속에 밀폐 되기도 하며 박스가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 (2) 유침 축전기는 건식 축전기와 유사한 것이나 유전체(보통 플라스틱 필름이나 플라스틱 필름과 종이의 것)에 기름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지되어 있다.
- (3) 가스침지 축전기는 공기 외에 가스에 의해 분리된 둘 이상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체(dielectric)로서 작용한다.
- (4) 어떤 경우에는 축전기[“유입(油入)축전기(oil filled capacitor)”]가 기름이나 그 밖의 적당한 액체를 충전시킨 용기 내에 밀폐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압력계와 안전밸브와 같은 부속장치를 갖추고 있다.
- (5) 전해 축전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극판은 알루미늄이나 탄탈륨의 것이며, 한편 또 다른 극판의 역할은 전류가 전극(때때로 알루미늄이나 탄탈륨판에 유사한 모양의 것)에 의하여 유도되는 적당한 전해액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전해 작용은 알루미늄이나 탄탈륨에 복잡한 화합물의 박막을 생성시키며, 그 화합물은 그 후에 유도체를 구성한다. 이 축전기는 때때로 용기 내에 밀폐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부의 전극 그 자체가 용기를 구성하는 것이며 ; 이러한 축전기에는 때때로 밸브의 밑바닥과 유사한 저부에 핀(pin)이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축전기로서 페이스트 상태의 전해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건식 전해축전기(dry electrolytic capacitor)”로도 불리운다.

(B) 가변식 축전기(variable capacitor)

가변식의 축전기는 정전용량을 임의로 가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기가 유전체이며 극판은 보통 두 그룹의 금속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의 극판을 이루는 금속판 그룹은 고정되어 있으나, 다른 한쪽의 극판은 일정한 축 위에 부착되어서 고정극판 사이를 통과하면서 회전되도록 되어 있다. 가동극판(회전자)이 회전되어 고정극판(고정자)과 겹쳐진 정도는 축전기의 정전용량을 변화시킨다.

(C) 프리세트(pre-set)나 조정식 축전기(adjustable capacitor)

프리세트나 조정식 축전기[트리밍 축전기(trimming capacitor)를 포함한다]는 정전용량이 협소한 범위 내에서 정확한 값까지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절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다. 어떤 형에 있어서는 극판간의 거리가 나사에 의하여 변화한다. 그 밖의 형은 하나의 실린더(cylinder)를 다른 쪽의 실린더 내에서 여러 가지 범위로 이동시킬 수 있거나 두 개의 실린더가 상호 반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두 개의 금속제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사용하는 유도체는 예를 들면, 운모 · 도자재료 · 플라스틱 · 공기이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축전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 *

역률(力率) 향상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동기전동기가 때로는 “동기축전기(synchronous capacitor)”로 불리더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01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532.23호

이 소호에는 단층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를 분류하며, 원반(disc)이나 관(tube) 모양이다.

소호 제8532.24호

이 소호는 다층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를 분류하는데, 접속용 도선(connecting lead)을 가지며 칩(chip)의 모양이다.

85.3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8533.29 -- 기타

-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31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8533.39 -- 기타

8533.4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90 - 부분품

(A) 저항기(resistor, resistance)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導體)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모양과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형재·선·때로는 보빈(bobbin)에 감아진 코일의 모양의 것)이나 봉 모양의 탄소나 탄소·탄화규소·금속이나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나 일부를 회로 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유침(油浸) 저항기(oil immersed resistor)**

(2) **탄소저항램프(carbon resistance lamp)** : 조명전구의 모양이지만 특수한 탄소 필라멘트를 갖추고 있으며 ; 다만, 조명용의 탄소필라멘트 전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39호)**.

(3) **버레터(barretter)** : 수소나 헬륨을 충전시킨 유리관 내에 조립되어 있는 철제 필라멘트로 되어 있으며 ; 이러한 것은 전류를 어떤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일정치로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4) **표준 저항기(standard resistor)** : 비교와 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며(예: 실험실에서) ; 또한 저항상자는 회로에 필요한 저항의 결함을 접속시키기 위하여 개폐나 터미널의 장치를 갖춘 상자 내에 조립되어 있는 다수의 저항기로 되어 있다.

(5) **비선형 저항기(non-linear resistor)** :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온도계수(보통 유리관 내에 부착)를 가진 온도(서미스터)에 좌우되며, 비선형 저항기는 전압(바리스터/VDR)에 의해 좌우되나 **제8541호**의 바리스터 다이오드(varistor diode)는 **제외한다**.

(6)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로 알려진 저항기** : 스트레인 측정용 기구의 감응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

- (a) 전열용 저항체(제8516호나 제8545호)
- (b) 광의존 저항기(light dependent resistor)(**제8541호**)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접동 접촉자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접동하는 커서(cursor)를 갖춘 접동선형 가감저항기 ; 계단식의 가감저항기 ; 액체 도전체 내에 침지시킨 가동전극을 갖춘 수소의 가감저항기 ; 자동가감저항기(예: 최소나 최대의 전류나 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구를 갖춘 것) ; 원심형 가감저항기를 포함한다.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예: 조명회로에서 빛을 서서히 소멸 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극장용 조광기와 ; 전동기회로에서 하나나 그 이상의 저항기를 개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폐장치를 갖춘 약간의 저항기로 구성되는 전동기의 시동기와 제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호에 분류한다.

(C) 전위차계(potentiometer) :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와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태핑(sliding tapping)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저항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85.34 - 인쇄회로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양각(embossing)·도포(plating-up)·식각(etching) 등 어떠한 인쇄처리 방식에 의하여 도체소자(배선)·접촉소자나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와 같은 그 밖의 인쇄된 구성부분[“수동(passive)”소자] [전기신호를 발생·정류·검출·변조나 증폭할 수 있는 소자(다이오드·트라이오드나 그 밖의 “능동(active)”소자)를 **제외한다**]를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 어떤 기본회로나 “블랭크(blank)”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나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pattern)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결합된 것도 있다.

절연기판재료는 일반적으로 평판이나, 원통형·원추형 등의 것도 있다. 회로는 기판의 편면이나 양면(이중 회로)에 인쇄되어 있으며, 수 개의 인쇄회로가 층상으로 조합되어 상호 접속된 것(다층 회로)도 있다.

이 호에는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된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도 포함한다.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는 진공증착법·음극분해법·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유리나 도자로 만든 판 위에 금속막이나 부전도막의 특정한 모형을 부착함으로써 형성한다. 이러한 모형에는 마스크(mask)를 사용하여 형성된 것도 있고 또한 선택적 식각(etching)을 하여 만든 연속상의 시트(sheet)를 부착시켜 형성한 것도 있다.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는 스크린인쇄(screen printing)에 의하여, 가루 모양의 유리·도자·금속의 혼합물에 적당한 용제(solvent)를 함유한 페이스트(또는 잉크)를 사용하여 박막회로(thin-film circuit)와 유사한 모형을 도자제의 판 위에 형성한 다음 그 판을 노로 가열시킨다.

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해서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막회로는 일반적으로 접속용 도선이나 터미널이 갖추어진 금속제·도자제·플라스틱제의 캡슐 속에 유지되어 있다.

인쇄공정에서 얻어지는 개별 수동(passive)부품[예: 인덕턴스(inductance)·축전기(capacitor)·저항기(resistor)]은 이 호의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504호·제8516호·제8532호·제8533호**).

기계적 소자나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의 주 제2호나 제90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85.35 -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 퓨즈

- 자동차단기

8535.21 --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535.29 -- 기타

8535.3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8535.40 -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8535.90 - 기타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와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나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A) 퓨즈(fuse)와 자동차단기(automatic breaker) : 전류 강도나 전압이 어떤 기준을 초과할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시킨다.

(B) 회로단속용 개폐기(make-and-break switch) : 고압회로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는 보통 아크(arc)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장치를 갖춘 보다 복잡하고 튼튼한 구조의 것이며 또한 많은 접속기를 갖고 있거나 레버 · 보조전동기(servomotor)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원격 조절되는 것이다. 이들 스위치는 때때로 액체(예: 기름)나 가스로 충전되어 있거나 그 속이 진공 상태로 되어 있는 금속 용기나 절연재에 부착되어 있다.

(C) 피뢰기(lightning arrester) : 이것은 고전압 케이블이나 전기설비를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호 장치이며 ; 이들 피뢰기는 보통 고압전선의 절연용 장치로 구성 되는데 만일 전선이나 전기설비가 손상될 정도의 예외적인 고전압이 될 경우에 이를 차단 해서 도전 통로를 땅으로 향하게 한다. 많은 형의 것 중에는 산화금속피뢰기 · 탄소알갱이 피뢰기 · 절연체(insulator) 위나 절연체인(insulator chain) 위에 장치된 뿔 모양의 스파크 갭(horned spark gap) · 보호물로 구성된 피뢰기 · 전해형 피뢰기 등이 있다. 다만, 방사능의 원리를 기초로 한 피뢰기는 제9022호에 분류한다.

(D) 전압제한기(voltage limiter) : 이들 기기는 두 도체간의 전위차나 예정치를 초과하지 않는 도체와 어스(earth)간의 전위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들 장치는 때로는 방전등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나, 조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램프로도 간주할 수 없다.

다만, 자동전압조정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2호).

(E) 격리용 개폐기(isolating switch) : 회로의 격리용 섹션(isolating section)에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완만한 차단형으로 개폐식 스위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그 회로에 부하가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F) 서지(surge) 억제기나 스파이크 억제기(spike suppressor) : 이것은 고주파의 변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선로나 전기기기과 직렬과 병렬로 삽입시킨 코일, 축전기(capacitor) 등을 조합한 것이다. 간단한 코일이나 축전기가 그 자체에 대하여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앞에 설명한 기기의 조립품(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은 제외한다)을 제외한다(제8537호).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 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 · 광섬유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 8536.10 - 퓨즈
- 8536.20 - 자동차단기
- 8536.30 - 전기회로 보호용인 그 밖의 기기
 - 계전기(繼電器)
- 8536.41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 8536.49 -- 기타
- 8536.50 - 그 밖의 개폐기
 - 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
- 8536.61 -- 램프홀더
- 8536.69 -- 기타
- 8536.70 -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 8536.90 - 그 밖의 기기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 다만, **제8535호**에는 아래의 1,000볼트를 초과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이나 케이블용의 커넥터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 · 쌍극 · 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와 계전기(繼電器 : relays)도 포함한다.

(A) 개폐기(開閉器 : switch)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 · 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 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 스위치(tumbler switch) · 레버조작 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 · 회전 스위치(rotary switch) · 펜던트 스위치(pendant switch) · 푸쉬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 · 공업용 스위치[예: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 캠 스위치(cam switch) · 마이크로 스위치(micro switch) · 프록시미티(proximity) 스위치]를 포함한다.

문의 개폐에 의하여 조작되는 스위치와 형광등을 점등하기 위한 자동식의 열전기 스위치[스타터(starter)]도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서 분류하는 다른 예로는, 광학적으로 연결된 입·출력 회로로 구성된 전자 AC 스위치[절연된 사이리스터(thyristor)AC 스위치] ; 트랜지스터와 1000V 이하용 논리칩 [칩온칩(chip-on-chip) 기술]으로 구성된 전자스위치(온도보호 전자스위치 포함) ; 11amps 이하의 전류용 전기기계식 스냅-작동스위치(토글스위치) 등이 있다.

반도체 소자[예: 트랜지스터(transistor)·사이리스터(thyristor)·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접촉에 의하지 않고 작동하는 전자 스위치

스위치가 갖추어진 문 자물쇠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301호)**.

(B)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 : 하나나 그 이상의 선로를 하나나 그 이상의 다른 선로에 접속시키는데 사용한다.

가장 간단한 형식에 있어서는 한 선로가 가동 암(moving arm)에 의하여 다른 노선의 어느 것에도 접속되는 중심점에 접속되어 있다. 이 형식의 한층 복잡한 기기에는 전동기의 시동용 스위치와 전동차용의 제어기어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에는 때때로 스위치기어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회로의 개폐를 행하는 많은 저항기도 포함한다(제8533호 해설 참조).

이 호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세트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스위치 장치도 포함한다.

(C) 계전기(繼電器 : relay) : 이것은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기·도로용이나 철도용의 신호기기·공작기계 등의 제어용이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

다음 예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이 있다.

- (1) **제어를 위하여 전기적 수단을 사용하는 형태** : 전기자석식계전기·영구자석식계전기·열전식계전기·유도식계전기·정전식계전기·광전식계전기·전자식계전기 등
- (2) **작동을 위하여 조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형태** : 최대전류계전기·최대나 최소 전압계전기·차동계전기·즉시 차단동작을 행하는 계전기·시간지연계전기 등이 있다.

계전기(relay)로도 간주하는 접촉기(contactor)는 전기회로를 연결하거나 절단하는 장치로서 기계적인 고정 장치나 수동(手動)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류에 의해 활동적인 상태로 작용되며 유지한다.

(II)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

이 호에는 **퓨즈(fuse)**를 포함한다.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fuse wire)이 결합된 (또는 결합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 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와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통형(筒型)퓨즈는 양단부가 금속제의 캡에 접속되도록 퓨즈선을 넣은 관(tube)으로 되어 있으며 ; 다른 퓨즈는 선에 접속시키기 위한 베이스나 소켓(socket)과 퓨즈선이 부착된 접속부분[이것은 소켓(socket)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키거나 스프링식의 접촉자 사이에 끼워 넣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선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완전한 퓨즈(complete fuse)를 포함한다. 소켓(socket)과 접속 부분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다음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즉 완전한 절연재료제의 것(단순히 조립을 목적으로 소량의 금속을 주입한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47호)**. 퓨즈선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사용하기 위하여 루프(loop)나 그 밖의 접속수단을 갖춘 짧은 퓨즈선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

이 호에는 또한 정전압 변압기(제8504호)와 자동전압조정기(제9032호)를 **제외한다**.

(III)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 (2) 전동기용의 브러시와 전차·리프팅 기기용 등의 집전장치(가공선이나 제3레일의 집전장치 등)와 같은 **섭동접촉기(摺動接觸器 : sliding contact)** : 다만, “탄소형(carbon)”이나 흑연제의 것은 **제외한다(제8545호)**. 이러한 것은 블록 모양의 금속·와이어 클로드·적층된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부가** 흑연의 윤활층으로 피복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 (3) **전구용이나 진공관용의 소켓(sockets)과 램프홀더(lamp-holders)** : 어떤 램프홀더는 가지 모양의 축대에 부착된 초의 형으로 되어 있거나 벽에 대하여 브래킷(bracket)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것은 그 주기능이 램프홀더(lamp-holder)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44호)**.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 여기에는 전기 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

터미널 스트립(terminal strip)은 전기배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약간의 금속터미널이나 접속기를 갖춘 스트립 모양의 절연재료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태그 스트립(tag strip)이나 패널(panel)도 포함하며 ; 이러한 것은 전선이 납땜으로 접합될 수 있도록 절연재료 내에 고정시킨 약간의 금속태그로 구성되어 있다. 태그 스트립은 라디오나 그 밖의 전기기기에 사용한다.

(C) **접속함(junction box)**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terminal)이나 그 밖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전기적 접속수단이나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상자는 이 호에 **포함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IV) **광섬유용(optical fibre) · 광섬유다발용(optical fibre bundle) · 케이블용(cable) 커넥터**

제8536호에서 광섬유용 커넥터 · 광섬유 다발용 커넥터 · 케이블용 커넥터란 디지털 회선 시스템에서 광섬유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렬해 주는 커넥터를 말한다. 이들은 그 밖의 기능으로서 신호의 증폭 · 재생 · 변조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케이블이 달려 있지 않은 광섬유용 커넥터는 이 호에 분류하지만 케이블이 달린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44호나 제900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전압조정기로 사용하는 비선형 전압저항기(바리스터/VDR)(**제8533호**)
- (b) 앞에서 설명한 기기의 조립품(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은 **제외한다(제8537호)**)
- (c) 전압조정기로 사용하는 반도체 다이오드(diode)(**제8541호**)

**85.37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20 - 전압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 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와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한다.
-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 특수 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연산(演算: arithmetic)]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전화용의 스위치 보드(**제8517호**)
- (b) 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예: 두 개의 스위치와 커넥터로 구성된 것)(**제8535호**나 **제8536호**)
- (c) 텔레비전 수신기기·비디오 녹화기나 그 밖의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 장치(**제8543호**)
- (d) 시계무브먼트(clock movement)나 동기(同期)전동기(synchronous motor)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

85.38 - 부분품(제8535호 · 제8536호 ·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538.90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들의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배전반용 보드(boards for switchboard)를 포함한다. **다만**, 이것들은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 8539.10 -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 8539.22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39.29 -- 기타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 8539.31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 8539.32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램프,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 8539.39 -- 기타
 -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 8539.41 -- 아크램프
- 8539.49 -- 기타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 8539.5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 8539.52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 8539.90 - 부분품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나 석영으로 만든 용기로 구성된 전구는 그 속에는 전기적 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 자외선을 포함한다)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들어 있다.

이 호에는 특수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휴대용 방전램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필라멘트 램프·가스주입의 방전램프나 증기주입의 방전램프·아크램프·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포함한다.

(A)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은 때때로 자동차의 차체(bodywork)에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가스를 넣었거나 진공형의 램프 내측에 렌즈·반사경·필라멘트가 밀봉되어 있다.

**(B)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filament lamp)(자외선램프(ultra-violet lamp)나 적외선램프(infra-red lamp)는 제외한다)
(D) 부분 참조)**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금속제나 탄소제)에 전류를 통하여 백열이 될 때까지 가열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이 유리제의 구(球)(때로는 착색되어 있다)는 진공되어 있거나 저압의 불활성 가스가 봉입되어 있으며 ; 베이스는 램프홀더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식이나 삽입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구를 전원에 접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구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球)형[네크(neck)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배(梨)형이나 양과형·화염형·관형(직관이나 곡관의 것)·조명용·장식용·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용 등의 특수한 의장형의 것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할로겐램프(halogen lamp)를 포함한다.

**(C) 방전램프(discharge lamp)(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D) 부분 참조)**

이러한 것은 전극을 갖춘 유리로 만든 구(球 : envelope)[보통 관(管)형]나 석영으로 만든 구(球)(보통 유리로 만든 외측 용기)에 방전작용에 의하여 발광되는 가스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저압 상태로 봉입하여 만든 것이며 ; 어떤 방전램프에는 가스와 증기 발생물질의 두 가지 모두가 봉입되어 있다. 또 어떤 방전램프는 가스의 작용으로 전극 위에 발생하는 화합물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밸브를 갖춘 것도 있으며 ; 그 밖의 진공재킷식이나 수냉각식의 것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방전램프의 내벽은 방전램프(형광램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키는 특수 물질로 도포되어 있다. 어떤 방전램프는 고전압에서 사용하고 그 밖의 것은 저전압에서 사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주요한 방전램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가스 방전관(gas discharge tube)** : 네온·헬륨·아르곤·질소·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를 봉입한 것으로서, 사진용이나 스토로보스코우프(stroboscopic) 시험용으로 사용하며 섬광 방전램프(flashlight discharge lamp)를 포함한다.
- (2) **나트륨 증기 램프(sodium vapour lamp)**
- (3) **수은 증기 램프(mercury vapour lamp)**
- (4) **가스를 채운 이중 램프(gas filled dual lamp)** : 빛이 백열필라멘트와 가스 방전의 양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5)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 (6) **크세논(xenon)과 알파뉴메릭 관(alphanumeric tube)**
- (7) **스펙트럼 방전 램프(spectral discharge lamp)와 글로우 방전 램프(glow discharge lamp)**

이러한 방전램프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가정용 조명 ; 가로 조명 ; 사무실·공장·상점 등의 조명 ; 기계의 조명 ; 장식용·광고용의 조명이 있다. 이 호에는 단순한 직관이나 곡관과 여러 가지의 복잡한 모양을 가진 관[예: 소용돌이·문자·숫자·별의 모양을 한 것]을 포함한다.

(D) 자외선 램프(ultra-violet)와 적외선 램프(infra-red lamp)

자외선 램프는 의료용·실험실용·살균용·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자외선 램프는 보통 수은을 봉입한 석영유리로 만든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때때로 유리로 만든 외측 용기에 넣어져 있다. 어떤 것은 블랙라이트 램프(black light lamp)(예: 연극에 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로서 알려져 있다.

적외선 램프는 적외선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필라멘트 램프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램프의 내부는 반사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리나 은으로 피복되어 있다. 적외선 램프는 예를 들면, 의료용이나 공업용의 가열원으로 사용한다.

(E) 아크램프(arc-lamp)

이러한 종류의 램프의 빛은 아크(arc), 이를 유지하는 전극의 어느 일방이나 쌍방의 백열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전극은 일반적으로 탄소나 텅스텐으로 되어 있다. 어떤 아크램프(arc lamp)는 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극을 함께 접근시켜 계속 전극의 점차적인 소모에도 관계없이 적당한 간격으로 전극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장치를 갖추고 있다. 교류작동용으로 설계된 아크램프는 시동용의 보조전극을 갖추고 있다. 개방형 아크램프에 있어서는 아크가 외기 중에서 발생하며 ; 그 밖의 것은 외기에 통하는 적당한 조절기를 갖춘 유리로 만든 용기 내에서 아크가 발생한다.

아크램프(arc lamp)는 복합기기로서 이 호에 열거된 다른 물품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간단한 조명체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F)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이 모듈에서 나오는 빛은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에 장착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접속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LED)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모듈은 램프-홀더(lamp-holder) 안에 고정하기 위한 캡[베이스(base)][예: 나사식, 삽입(bayonet)식이나 바이-핀(bi-pin)식]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모듈은 전기 접속자(electric connectors)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듈은 직류(DC) 전압과 전류를 LED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회로를 갖추고 있다[전력 제어(power control) 장치]. 이러한 모듈은 전력 제어 장치와 함께 교류(AC) 전력을 정류하기 위한 회로[전력 공급(power supply) 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G)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이들 램프로부터 나오는 빛은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LED)에서 만들어진다. 이 램프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구, 하나 이상의 LED, 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전압을 LED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로와 램프 홀더에 고정하기 위한 캡[베이스(base)][예: 나사식·삽입식(bayonet)이나 바이핀(bi-pin) 방식]로 구성한다. 어떤 램프는 방열판(heat sink)이나 전력을 정류하기 위한 정류기(rectifier)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램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형[넥(neck)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배(梨)형 또는 양파형·화염형·관형(직관이나 곡관의 것)·조명용·장식용·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용 등의 특수한 의장형의 것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백열·방전 전기램프와 전구용 받침
- (2) 방전램프와 방전관용 금속전극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램프용의 유리로 만든 구(球)와 이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유리로 만든 부분품[예: 스포트라이트 (spotlight) 별브의 반사경](제7011호)
- (b) 탄소 필라멘트를 갖춘 저항램프와 수소가 충전된 철 필라멘트를 갖춘 가변램프(제8533호)
- (c) 형광램프 점등용의 자동식 열전기 개폐기(switch : starter)(제8536호)
- (d) 열전자관(제8540호)
- (e)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LED)
- (f) 전자발광장치 :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판(plate)·패널(panel)의 상태로서 전자발광물질(예: 황화아연)을 기본 재료로 하며 전자발광물질은 유도물질의 두 층 사이에 위치한다(제8543호).
- (g) 아크램프(arc lamp)용의 탄소와 탄소제 필라멘트(제8545호)

85.40 - 열전자관 · 냉음극관 · 광전관[예: 진공관 ·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 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 -- 천연색

8540.12 -- 단색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0.60 - 그 밖의 음극선관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 · 속도변조관(klystron) · 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 · 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 자전관(magnetron)

8540.79 -- 기타

- 그 밖의 관

8540.81 -- 수신관이나 증폭관

8540.89 -- 기타

- 부분품

8540.91 -- 음극선관의 것

8540.99 -- 기타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진공이나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관(valves and tube)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종류, 즉 열전자관(전자가 방출되기 전에 음극이 가열되어야만 한다) ; 냉음극관 ; 광전관(photo-cathode valves and tube)[음극이 광(光)의 작용으로 여기(勵起 : excited)되어진다]이 있다. 이러한 것은 진극의 수에 따라 이극관 · 삼극관 · 사극관 등으로 불려진다. 동일한 용기에 서로 다른 기능의 둘이나 그 이상의 관을 봉입한 것이 있다(복합관). 이 용기는 유리 · 세라믹 · 금속 · 이러한 재료들의 복합물일 수도 있으며, 또한 냉각장치[냉각용 핀(cooling fin) · 물 순환장치 등]를 결합한 것도 있다.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관(管)이 있으며, 이 중 어떤 것은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 · 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 · 카시노트론(carcinotron) · 속도변조관(klystron)], 판극관(板極管 : disc-sealed tube)(lighthouse tube), 안전관(stabilising valve), 사이러트론(thyratron), 이그나이트론(ignitron) 등과 같이 특수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정류관(rectifying tubes and valve)** : 이러한 것은 교류를 직류로 정류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다. 이들은 진공형의 것, 가스를 봉입하거나 증기(예: 수은증기)를 넣은 것이 있으며, 보통 두 개의 전극을 갖추고 있다. 어떤 형식[예: 사이러트론(thyratron)]의 것은 그 작동을 제어시킴과 아울러 역동(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킨다)시킬 수 있도록 제어용 그리드(grid)을 갖추고 있다.

(2) **음극선관(cathode-ray tube)**

(a) 텔레비전용 촬상관(television camera tube)[영상픽업관, 예: 이미지 오시콘(image orthicon)이나 비디콘(vidicon)] : 이는 보통 스캐닝 프로세스에 의해 광학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전자빔관이다.

(b) 영상변환관(image converter tube) : 영상변환관은 진공관으로서 그 안에서 어떤 영상(보통 적외선으로 되어 있다)이 광전음극면에 투영되며, 광전 음극관은 이에 따라 형광면에 가시상을 비춰준다.

(c)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 이는 전자관으로서 그 안에 있는 광전 음극면에 투영된 상이 형광면에 적절히 밝은(증강된) 상으로 비춰준다.

(d) 그 밖의 음극선관 : 이는 전기적 신호를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가시상으로 변환하는 관이다. 저장 튜브(storage tube)가 이러한 형의 일례이다. 텔레비전 수상관이나 비디오 모니터관의 경우에는 음극으로부터 전자가 집속, 편향 등이 된 후에 형광재료를 피복한 내벽의 부분[보통 관(tube)의 끝 부분]에 빔(beam) 상태로 집합되어, 이것이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영상의 화면을 구성한다.

음극선관은 또한 레이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특정 종류의 자동자료처리기의 터미널(display tube)에 사용한다.

(3) **광전관(photocathode tube)[진공으로나 가스로 충전된 것 - 또한 광전셀(photoemissive cell)로도 알려져 있다]** : 이는 두 전극을 가지는 유리나 석영유리로 만든 관(管)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음극은 광전도성 재료(보통 알칼리 금속)의 층으로 피복되며; 빛의 작용에 의해 이 피복층은 두 전극 사이에 전도성을 띠게 하는 전자가 방출되며, 양극에 전자가 집결한다.

광전자배증관(photomultiplier)은 광전음극과 전자배증기로 구성되는 감광(感光) 진공관이다.

(4) **그 밖의 관(other valves and tubes)** : 이들은 보통 진공관식이며, 어떤 것은 몇 개의 전극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고주파발진용으로 사용하며, 증폭기 · 검파기 · 스캔변환기 [광전관(photocathode)의 사용없이] 등으로 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전극[음극·그리드(grid)·양극], 관용용기(유리로 만든 것이 아닌 것), 음극선관용 반내파(反內破) 케이싱(anti-implosion casing), 스캐닝 목적으로 음극선관의 목(neck) 부위에 장착되는 디플렉션(편향) 코일 등이 있다.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음극선관용 구(球)모양의 유리로 만든 평면판과 원추(제7011호)
- (b) 금속 탱크 수은아크 정류기(제8504호)
- (c) 엑스선관(제9022호)

85.41 -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8541.1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 8541.21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 8541.29 -- 기타
- 8541.3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 8541.4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 8541.42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8541.49 -- 기타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 8541.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 8541.59 -- 기타
- 8541.6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8541.90 - 부분품

**(A) 반도체 디바이스
(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이들은 이 류의 주 제12호가목 1)에 정의되어 있다.

이 그룹의 소자의 작용은 특정 “반도체(semiconductor)” 재료의 전자적 특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semiconductor-based transducer)의 경우에는 물리적[예: 기계적 · 열(熱)적] · 전기적 · 광학적 · 화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반도체 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재료의 주된 특징은 실온(室溫)에서의 그 저항률이 금속도체의 저항률과 절연체 저항률 간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료는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광석[예: 결정방연광(結晶方鉛鑛 : crystal galena)] 4가의 원소(게르마늄 · 실리콘 등)나 원소의 화합물(예: 비화갈륨 · 안티몬화 인듐 등의 3가원소와 5가원소의 화합물)로 되어 있다.

4가원소로 구성되는 반도체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결정체이며, 이러한 것은 순수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의 “불순물(impurity)”(dopant)로 매우 연한 도프 처리(함유량은 100만분의 얼마 정도의 비율)를 한 후에 사용한다.

4가원소에 대하여 가해지는 “불순물”은 5가원소(인·비소·안티몬 등)이나 3가원소(붕소·알루미늄·갈륨·인듐 등)일 수도 있다. 전자는 과잉전자[부(負)의 전하]를 가진 n형 반도체를 형성하고 ; 후자는 전자(electron)가 부족한 상태[정(正)의 전하를 갖는 정공(正孔)]에 있는 p형 반도체를 형성한다.

3가원소와 5가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반도체 재료도 도우프 처리가 행해진다.

광석으로 구성되는 반도체 재료에 있어서는 그 광석 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이 도펀트(dopant)로 작용한다.

이 그룹에 해당되는 반도체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p형과 n형의 반도체 재료의 한 개 이상의 “**접합(jun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다이오드(diode)** : 이것은 단일의 p·n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터미널 디바이스(terminal device)이다. 이들은 한쪽 방향(전진방향)으로 전류를 보내나, 다른 방향(역방향)에는 고저항을 발생한다. 이들은 검파용·정류용·개폐용 등에 사용한다.

다이오드의 주된 형으로는 신호용 다이오드(signal diode)·전력의 정류용 다이오드(power rectifier diode)·전압조절용 다이오드(voltage regulator diode)·전압보상용 다이오드(voltage reference diode)를 들 수 있다.

(II) **트랜지스터(transistor)** : 전류를 증폭·발전·주파수 변환·스윗칭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 소자와 4단자 소자이다. 트랜지스터(transistor)는 제3의 단자에 전기(電界 : electric field)를 가하여 다른 두 개의 단자간의 저항을 변화시켜 이에 의하여 작동한다. 부가된 제어신호나 자기(磁界)는 저항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작동보다 약하므로 증폭 작용이 일어난다.

트랜지스터(transistor)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쌍극성 트랜지스터(bipolar transistor) : 두 개의 다이오드(diode)형의 접합으로 구성하는 3단자 소자로서, 트랜지스터의 작용은 정과 부 양전하의 캐리어(carrier)에 의한다 [그러므로 쌍극성(bipolar)이라 한다].

(2) 전기(電界)효과 트랜지스터[또한 금속산화물반도체(MOS)로 알려져 있다] : 이것은 접합을 갖거나 갖지 않을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것이든 두 개의 단자간에 전하 운반자(carrier)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켜 작용시킨다. 전기(電界)효과 트랜지스터에서는 한 종류의 전하 운반자(carrier)만으로 트랜지스터 작용을 행한다(그러므로 단극성이라 한다). 기생 다이오드는 MOS 타입 트랜지스터(또한 MOSFET로도 알려져 있다)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유도 부하 스위칭(inductive load switching)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프리휠링 다이오드(freewheeling diode)로서 작동하게 된다. 네 개의 단자를 가진 MOSFET는 사극관(四極管 : tetrode)이라 알려져 있다.

(3)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한 개의 게이트 단자와 두 개의 부하 단자[에미터(emitter)와 컬렉터(collector)]로 구성된 3-단자 디바이스이다. 게이트와 에미터 단자에 적절한 전압을 부여함으로써, 한쪽 방향의 전류를 통제(즉, 접속과 차단)할 수 있다. IGBT 칩은 단일의 패키지(패키지형 IGBT 디바이스) 내에 다이오드를 내장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IGBT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트랜지스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Ⅲ)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이 류의 주 제12호가목 1)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들은 반도체 기관이나 반도체 재료가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변환하는 핵심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독립적인 기술적 유닛(uni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다이 제품(bare die product)이나 패키지(package)로 제시될 수 있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구성하는 부품(트랜스듀서의 구조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분리불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는 능동이나 수동 개별 구성부품을 포함한다)은 모든 의도와 목적상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야만 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일부 구성부품을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다. 트랜스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반도체 기반이 아닌 구성부품은 센서(sensor)·액추에이터(actuator)·공진기(resonator)·오실레이터(oscillator)로서의 트랜스듀서의 기능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트랜스듀서의 부분품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구성부품의 전형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그러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 (i) 패키지(packagr)로서, 일반적으로 상호 연결을 위한 금속 와이어(내부 외부 와이어 본드 연결), 리드프레임(leadframe),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 또는
- (ii) 기능을 가능하게 하거나 보조하는 구성부품(예: 자석, 광학소자 등)

"반도체 기반(semiconductor-based)"이라는 정의에는 반도체 재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닌 트랜스듀서에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도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의 특성은 반도체 기술[마이크로 기계작업(micro machining)]을 사용함으로써,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고(高)정밀도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기계적 강도, 유연성, 열전도성, 광학적 반응성, 내화학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에는 예를 들어, 두께(thickness)나 탄성 유연성(elastic flexibility)에 의해 트랜스듀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멤브레인(membrane), 봉(bar), 캔틸레버(cantilever), 캐비티(cavity), 반사경(mirror), 채널(channel)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예를 들어, 실리콘(Si), 게르마늄(Ge), 탄소(C), 실리콘 게르마늄(SiGe),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비소화갈륨(GaAs), 비소화인듐 갈륨(InGaAs), 인화갈륨(GaP), 인화인듐(InP), 텔루르화주석(SnTe), 산화아연(ZnO)과 산화갈륨(Ga₂O₃)이 포함된다.

"반도체 기술에 의한 제조"라는 표현은 웨이퍼(wafer) 레벨(level)에서 가공하는 분야로서, 연마(grinding), 광택(polishing), 도핑(doping), 회전도포(spin coating), 이미징(imaging), 화학기상증착(CVD), 물리기상증착(PVD), 갈바닉(galvanic), 현상(developing), 스트리핑(stripping), 식각(蝕刻 : etching), 베이킹(baking), 프린팅(printing) 공정을 말한다.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반도체 기반 센서(semiconductor-based sensor)** : 주 제12호가목 1) 다)에 정의되어 있다.

센서의 한 예는, 반도체기반 음향 센서로서 실리콘 마이크로폰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전자기계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MEMS) 소자이다. 마이크로전자 기계시스템(MEMS) 소자는 뻣뻣하고(stiff) 구멍이 뚫린 뒤판(backplate)과 실리콘 기판 위에 있는 유연한 막(flexible membrane)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은 음파(sound wave)를 가변적인 전기적 출력(variable electrical output)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음파는 물리적인 양으로서 막에 부딪쳐 진동하게 하고 그 진동을 통해 가변적인 전기적인 출력(output)을 만든다.

센서의 또 다른 형태는 가스 센서(gas sensor)인데, 이것은 전자 공여체/수용체(donors/acceptors) 흡착(adsorption)을 이용하여 표면적이 매우 높은 그래핀(graphene)의 저항(resistance)을 변화시킨다.

(2) **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semiconductor-based actuator)** : 주 제12호가목 1) 라)에 정의되어 있으며, 예로서는, 전자-열(electro-thermally)로 작동되는 마이크로전자기계 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MEMS) 반사경(mirror)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레이저 빔을 굴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응용분야[예: 섬유-대(對)-섬유 광학 스위칭(fibre-to-fibre optical switching), 레이저 투영기(laser projector), 자율 주행 · 레이저 추적(laser tracking) · 위치 측정 등에서 빛 감지와 거리 측정(Light Detection and Ranging : LIDAR) 등]에 사용한다. 전자-열(electro-thermally)로 작동되는 반사경(mirror)은 열 팽창성이 다른 반도체 기반의 구조물에 따라 작용하는 가열기 부품에 의해 움직인다.

(3) **반도체 기반 공진기(semiconductor-based resonator)** : 주 제12호가목 1) 마)에 정의되어 있으며, 예로서는, 필름 체적 탄성과 공진기(film bar acoustic wave resonator) (FBAR)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무선 장치의 다중화(multiplexing)용이나 채널 선택용으로 RF(Radio Frequency : 무선주파수) 기술에서 사용한다.

(4)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semiconductor-based oscillator)** : 주 제12호가목 1) 바)에 정의되어 있으며, 물리적 현상[공진기 안에 저장된 전자기장(電磁氣場 : electromagnetic field)의 에너지]을 전기적 신호[동조 전압(tuning voltage)에 따른 주파수를 가지는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IV)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semiconductor device)** : 여기서 말하는 “유사한(similar)”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이리스터(thyristor)** : 세 개 이상의 p·n접합을 갖는 반도체 물질 속에 네 개의 전도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제어펄스가 전도를 개시하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직류가 흐른다. 이들은 제어정류기 · 스위치 · 증폭기로 사용하며, 공통 콜렉터/베이스접합을 갖는 두 개의 연동하는 상호 보완형 트랜지스터(transistor)로 기능하는 것이다.

(2) **트라이액(triac)**[2방향의 삼극관 사이리스터(thyristor)] : 네 개의 p·n접합을 갖는 반도체의 물질 속에 다섯 개의 전도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제어 펄스가 전도를 개시하면 교류가 흐르는 것이다.

(3) **다이액(diac)** : 반도체 재료(두 개의 p·n접합)속에서 세 개의 전도권으로 형성되며, 트라이액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 **버랙터(varactor)**(또는 가변용량 다이오드)

(5) **전계(電界)효과형소자(field effect device)** : 그리디스터(gridistor)와 같은 것

(6) **건효과형 소자(gunn effect device)**

다만, 이 그룹에는 위에 열거한 것과는 달리 그 작동이 주로 온도·압력 등의 사용에 따라 행해지는 비선형 반도체 저항기[서미스터(thermistor)·바리스터(varistor)·자기저항기 등]와 같은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제8533호)**.

광선에 의하여 작용하는 감광성소자[포토다이오드(photodiode) 등]에 대하여는 (B)그룹을 참조할 것.

앞에서 설명한 디바이스는 단자나 도선(導線)[예: 기판이나 리드프레임과 같은 캐리어(carrier)에 장착된 핀(pin), 리드(lead), 볼(ball), 랜드(land), 범프(bump)나 패드(pad)]를 장착하여 밀봉시킨 것(components)이라든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elements), 조각으로 잘려 있지 않은 디스크상(wafers)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천연의 반도체 재료[예: 방연광(方鉛鑛 : galena)]는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그룹의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는 실리콘 기반의 센서(sensor)·액추에이터(actuator)·공진기(resonator)·오실레이터(oscillator)와 그 결합물(combinations)로서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포함하거나 이 류의 주 제12호나목 4)에서 규정한 복합부품 집적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8542호).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

- (a) 전자공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프 처리된 화학원소(예: 실리콘과 셀레늄)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이나 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의 것(제28류)과, 디스크 모양·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3818호)
- (b) 전자공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 낮은 비율로 특정 첨가제(예: 게르마늄·요드)를 함유하고 있는 셀렌화카드뮴과 아황산카드뮴·비산인듐 등과 같은 화학화합물[실린더·봉(rod) 등의 모양인지 여부나 디스크 모양·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3818호)
- (c) 전자공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된 결정(crystal)으로서, 디스크 모양·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광택낸 것인지와 균일한 에피텍셜층(uniform epitaxial layer)으로 도포되어 있는지에는 상관없으나, 개별 영역(discrete regions)을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도프 처리되지도 않고 확산되지도 않은 것이어야 한다](제3818호)
- (d)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 (e) 몰딩된(moulded) 모듈, 마이크로 모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마이크로 조립품(micro-assembly)으로서 개별 부품[능동부품(active)이나 능·수동부품(both active and passive)]이 결합되어 상호연결된 것(일반적으로 제84류, 제85류나 제90류)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광전관(photoemissive tube)[또는 광전셀(photoemissive cell)]은 그 작용이 외부 광전효과[광전자 방출(photoemission)]에 기초를 두므로 제8540호에 속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 셀(photoconductive cell)[광저항체(light dependent resistor)]** : 보통 두 전극 사이에 반도체 재료(황화카드뮴·황화납 등)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반도체 재료의 전기저항은 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화염검출기·자동카메라용 노출계·이동 물체의 계수용 노출계·자동 정밀측정 장치용 노출계·자동문 개폐장치 등에 사용한다.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i) **태양전지(solar cell)**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어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

(ii) **포토다이오드(photodiode)**(게르마늄·실리콘 등) : 본 물품의 특징은 광선이 pn접합(junction)을 두들길 때 저항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동차료처리공정(저장자료를 읽는 것)에 있어서 특정의 전자 관속에 광전관(photocathode)으로 사용하거나, 방사고온계 등에 사용한다. **포토티랜지스터(phototransistor)**와 **포토사이리스터(photothyristor)**는 광전수신기의 부류에 속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는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하우징(housing)이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포장되어 있어, 앞에서 설명한 (A) 부분의 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사이리스터(thyristor)와 구별한다.

(iii) **포토커플(photocouple)**과 **포토릴레이(photorelay)** : 이는 포토다이오드(photodiode)·포토티랜지스터(phototransistor)·포토사이리스터(photothyristor)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로 구성되는 것이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terminal)이나 도선(導線 : leads)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패키지(packaged)하거나 장착하지 않고 제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C)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특히 비화갈륨, 인화갈륨이나 질화갈륨을 기본재료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제어장치(control system)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하거나 조명기구 응용분야(illumination and lighting application)에 사용한다.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는 가(可)간섭성(coherent)의 광선을 발산하며, 예를 들면, 핵입자 검출용·고도측정장치용이나 원격측정장치용·광섬유를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들도 포함한다.

(1)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이들은 단일의 전기 구성부품으로서 주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LED) 칩[다이(dies)]가 밀봉되어 있으며, 광학소자나 열(熱)적·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을 포함한 전기 접속자]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보호용 다이오드[예: 제너 다이오드(Zener diode)]는 질화갈륨 기반의 발광다이오드(GaN LED) 칩을 GaN LED 패키지의 일부에 발생하는 정전(靜電) 부하(負荷)(electrostatic discharge)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GaN LED 칩에 역(逆)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백색 LED 패키지에는 두 가지의 기본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태는 LED칩과 형광물질 [인광체(燐光體 : phosphor)]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 LED 패키지의 두 번째 형태는 적색 LED칩, 녹색 LED칩(들)과 청색 LED칩의 조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 LED 패키지는 일반 조명용과 백라이트(backlight) 분야에서 사용한다.

(2)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

이러한 조립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를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LED의 갯수는 LED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빛의 강도(intensity)에만 영향을 준다.

특정의 LED 조립품은 LED 패키지 대신에 LED 칩을 사용한다. 이러한 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인광체(燐光體 : phosphor) 같은 것으로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밀봉되어 있다.

(D)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mounted piezo-electric crystal)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를 포함한다), 제3824호의 지르코산 티탄산납(lead titanate zirconate)이나 그 밖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이나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microphone)·확성기·초음파 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이나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흑연·바니시(varnish) 등이 도포되었거나 지지물 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내부(예: 금속상자·유리전구)에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나 확성기용 압전기 전지(제8518호)·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나 초음파 두께 측정기·초음파검사기용의 픽업 엘리먼트(feeler)(일반적으로 제90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9033호에 분류)·전자시계용 쿼츠 발진기(quartz oscillator)(제9114호).

이 호에는 또한 장착되지 않은 압전기결정소자를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824호·제7103호·제7104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8541.21호

트랜지스터(transistor)의 전력 낭비율은 온도가 섭씨 25℃로 한정된 용기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특수 작용전압을 작용해 주면서 지속적인 전력 취급용량을 계량함으로써 측정한다.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를 5볼트의 특수 작용전압에 계속적으로 0.2암페어의 취급용량을 부하하여 용기의 온도를 섭씨 25℃로 유지하면 그 낭비율은 1와트이다(암페어 × 볼트 = 와트).

열낭비가 있는 장치[예: 탭(tab)·금속제 케이스]가 달린 트랜지스터(transistor)에 대하여는 섭씨 25℃의 기준 온도가 바닥이나 케이스의 온도인데 반하여, 그 밖의 트랜지스터(예를 들면, 간단한 플라스틱 케이스가 달린 것)에 대해서는 실온(室溫)을 적용한다.

85.42 - 전자집적회로

- 전자집적회로

8542.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8542.32 -- 메모리

8542.33 -- 증폭기

8542.39 -- 기타

8542.90 - 부분품

이 호의 제품은 이 류의 주 제12호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전자집적회로는 수동(受動: passive)소자나 수동(受動)부품과 능동(能動: active)소자나 능동(能動)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의 유닛(unit)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수동(受動)”이나 “능동(能動)”으로 간주하는 소자나 부품에 관해서는 제8534호의 해설 첫째 문항 참조]. 다만, 수동(受動)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전자집적회로와 달리 개별 부품은 단일의 능동(能動) 전기기능(제85류의 주 제12호가목에서 정의된 반도체 디바이스)이나 단일의 수동(受動) 전기기능 (저항·축전기·인덕턴스 등)을 갖출 수 있다. 개별부품(discrete component)은 분리가 불가능하며 시스템의 기본적인 전자구성 부품이다.

그러나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 요소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의 전기기능을 가지는 부품은 개별부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전자집적회로에는 메모리[예: DRAM·SRAM·PROM·EPROM·EEPROM(또는 E²PROM)]·마이크로 컨트롤러·제어회로·논리회로·게이트 어레이(gate arrays)·인터페이스 회로 등이 있다.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I)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이것은 반도체 재료(예: 도핑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이다.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는 디지털·리니어(아날로그)·디지털-아날로그일 수 있다.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상태로 제시하는 것도 있다.

- (i) 장착되어 있는 것 : 단자나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금속·플라스틱에 봉입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봉입한 케이싱(casing)은 원통 모양·평행육면체 등의 모양일 수도 있다.
- (ii) 장착되지 않은 것 : 칩(chip)의 것(보통 직사각형의 것으로서 옆쪽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수 밀리미터 정도의 것)
- (iii) 절단하지 않은 웨이퍼(wafer)모양의 것[즉, 칩(chip)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금속산화물 반도체(MOS 테크놀로지)
- (ii) 바이폴라(bipolar) 테크놀로지로 만든 회로
- (iii) 바이폴라와 MOS 테크놀로지가 결합하여 만든 회로(BIMOS 테크놀로지)

모스(MOS), 특히 시모스(CMOS :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와 바이폴라(bipolar) 테크놀로지는 트랜지스터(transistor) 제조에 관련된 “일반적인(generic)” 기술이다.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의 기초 구성부품으로서 이들 트랜지스터(transistor)는 집적회로에 고유성(identity)을 부여한다. 바이폴라 회로는 최대 논리 속도를 요하는 곳에 적합하다. 반면에 모스회로는 고(高) 부품밀도(high component density)와 저(低) 에너지 요구량이 필요한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 게다가 시모스 집적회로는 에너지 요구량이 가장 낮다. 따라서 전력 공급이 제한되거나 냉각문제가 예상되는 곳에 유리하다. 바이폴라와 모스 테크놀로지 간의 보완적 관계는 고 집적된 바이폴라 회로의 속도와 저(低) 전력을 소모하는 시모스 회로가 결합된 양극성시모스(BICMOS)에서 더욱 명백하다.

(II) 하이브리드 집적회로(hybrid integrated circuit)

이것은 박막이나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 위에 만든 초소형 회로이다. 이러한 제조 과정은 어떤 수동(受動)소자[저항기·축전기(capacitor)·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동시에 제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chip)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 용기에 들어진 반도체(예: 특별히 설계된 축소 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또한 반도체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 회로에 내장되는 별도 제조된 수동(受動)소자를 넣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동(受動)소자는 칩 형태의 축전기·저항기·유도자와 같은 부분품이다.

몇 개의 층으로 된 기판은 일반적으로 도자제인데, 완전한(compact) 조립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접착된 것은 이 류의 주 제12호나목 2)에서 의미하는 하나의 기판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개의 소자는 이론상으로는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이다.

(III)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chip integrated circuit)

이것은 사실상 둘이나 그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 분리가 불가능하게 연결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나 그 이상의 절연재료 위에 있는지, 리드프레임(leadframe)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나 그 외의 능동(能動)이나 수동(受動) 회로소자는 없어야 한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두 개나 그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 나란히 적재한 것 ;

- 두 개나 그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 위 아래로 적층한 것 ;
- 세 개나 그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의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한 것

이 모노리식 집적회로들은 하나의 몸체로 결합되어 연결되며 봉입이나 다른 방법으로 패키징될 수 있다. 이들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간에 분리가 불가능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소자는 이론상으로는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상제조 상태 하에서는 비경제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이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chip integrated circuit)의 절연재료는 전기적으로 도체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 회로소자 이외의 방법으로 수동(受動)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한 물질로 결합되거나 특수한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절연물 내에 도체인 부분이 있는 경우 이들은 전자집적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법에 전형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절연체는 바닥에 있는(bottom-most) 칩이나 다이에 위치할 때 “인터포저(interposer)”나 “스페이서(spacer)”로 불릴 수 있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접착제·와이어본드·플립 칩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IV)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이들은 이 류의 주 제12호나목 4)에 언급된 회로와 구성요소들의 결합물이다.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는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하이브리드 집적회로·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실리콘 기반 센서·액추에이터(actuator)·오실레이터(oscillator)·공진기(resonator)와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하는 유도자를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제85류의 주 제12호나목 4)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서는 MCOs 내에 다른 MCOs가 장착될 수 있다.

모든 별개의 (교환 가능한) 유닛으로서, 제8504호·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거나 실리콘 기반 센서·액추에이터(actuator)·공진기(resonator)·오실레이터(oscillator)와 이들의 결합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서 **제외한다**[예: 변압기(제8504호)나 자석(제8505호)].

그러나,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으면서도 MCOs(또는 IC 패키지)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 그 밖의 다른 구성요소들[예: 기관(인쇄회로로 기능하는지에는 상관없다), 골드 와이어(gold wire)나 전도영역(conductive region)]이나 구조와 기능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다른 구성요소들(예: 몰드 화합물이나 리드 프레임)은 MCOs의 부분품/구성요소로 인정한다.

MCOs를 형성하는 집적회로와 구성부품은 하나 이상의 절연 기판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리드 프레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단일의 몸체[즉, 핀·도선(導線)·볼·랜드·범프·패드를 통해 외부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속하면서 특정하거나 독립적인 기술적 유닛으로 존재하는 구성부품] 안이나 위에 물리적·전기적·광학적으로 결합되고 상호 접속되며, 캡슐화(encapsulation)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패키징될 수 있다.

구성부품은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일부 구성요소들이 이론적으로는 제거되어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다.

MCOs는 종종 지지 캐리어(supporting carrier)[예: 인쇄회로기판(PCB)이나 후막(厚膜), 박막(薄膜), 절연 금속 기판 등의 다른 캐리어들]의 안이나 위에 단자(端子)와 도선(導線)을 이용하여 장착되도록 되어 있거나 전기 인터페이스에 접속되도록 된 경우도 있다. MCOs의 패키지는 여러 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유닛을 기계적 영향이나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MCOs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예: 패키지가 밀봉될 수도 있고, 구멍이나 창이나 막(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이 있거나 특정 기능에 필요한 부착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MCOs는 이러한 다른 특징과 부착물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공급된 물리적·화학적인 양을 입력값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실리콘 기반 센서·액추에이터(actuator)·오실레이터(oscillator)·공진기(resonator)와 관련된 출력값으로 처리한다.

이들은 컴퓨터용·통신기기(예: 셀룰러 네트워크용 전화)용·개인소비자용·산업용·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에는 수동(受動)소자만으로 구성된 막회로(film circuit)는 **제외한다(제8534호)**.

이 호에는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smart card)”나 그 밖의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매체(제8523호와 이 류의 주 제6호 참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와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II), (III)와 (IV)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사실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조립품도 **제외한다**.

- (a) 예를 들면,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discrete component)을 장착한 것 ;
- (b) 초소형 전자회로 위에 다이오드(diode)·변환기·저항기 등 하나나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
- (c) 개별부품들(discrete components)의 결합물,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나 복합부품 집적회로 이외의 초소형 전자회로의 결합물 ;
- (d)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하이브리드 집적회로·복합구조칩 집적회로·복합부품 집적회로와 이 류의 주 제12호나목 4)에 언급되지 않은 구성부품[예: 변압기(제8504호)나 자석(제8505호)]과의 결합물

이러한 조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i) 하나의 완성된 기계나 기기(또는 완전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를 구성하는 조립품은 해당 기계나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며 ;
- (ii) 그 밖의 조립품은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특히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와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

**제16부
85.42**

여기에는 특히, 특정의 전자 메모리 모듈[예: SIMM(단일 인라인 메모리 모듈 : Single In-line Memory Module)과 DIMM(이중 인라인 메모리 모듈 : Dual In-line Memory Module)]이 해당된다. 이들 모듈은 제16부 주 제2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이 류 총설 참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85.43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8543.10 - 입자가속기
- 8543.20 - 신호발생기
- 8543.30 - 전기도금용 · 전기분해용 ·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 8543.40 -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 8543.70 - 그 밖의 기기
- 8543.90 - 부분품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 · 변압기 · 축전기 · 초크(choke) · 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입자가속기(particle accelerator)** : 이러한 것은 하전입자(전자 · 양자 등)에 높은 운동 에너지를 주기 위한 장치이다.

입자가속기는 주로 핵의 연구에 사용한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제조, 의료용이나 공업용의 방사선 사진, 특정 제품의 살균 등에 사용한다.

입자가속기는 보통 큰 설비(무게가 수천 톤에 이를 수도 있다)로 되어 있다. 입자가속기는 입자발생원 · 가속실 · 입자의 가속에 사용하는 고주파전압 · 플럭스(flux)나 무선주파수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하나나 그 이상의 타겟(target)을 갖추고 있다.

입자의 가속 · 집속 · 편향은 고전압이나 고주파의 발생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정전(靜電) 장치나 전자(電磁) 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속기나 발생기는 때때로 방사선을 방지하는 차폐벽(screen)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입자가속기에는 반데그라프(Van de Graaff) 가속기 · 콕크로프트와 월톤(Cockroft and Walton) 가속기 · 선형가속기 · 사이클로트론(cyclotron) · 베타트론(betatron) · 싱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 싱크로트론(synchrotron) 등을 포함한다.

엑스선의 발생에 특히 적당하게 만든 베타트론(betatron)과 입자가속기(필요에 따라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제9022호**에 해당한다.

-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 (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 · 패턴발생기 · 워블레이터(wobbulator : 스위프발생기)를 포함한다.
- (3) **지뢰탐지기(mine detector)** : 금속물질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 기기 내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유사한 검출기는 예를 들면, 담배 · 식료품 · 목재 등의 통 안에 있는 금속성 이물질의 검출과 매물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mixing unit)** : 둘이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하며 ;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음향 믹서(audio mixer)와 이퀄라이저(equaliser)도 이 호에 해당한다. 다만, 영화용으로 특히 제작된 믹스(mixing)하는 장치는 **제외한다(제9010호)**.
- (5) **소음감쇠기(noise reduction unit)** : 녹음기와 함께 사용한다.
- (6) **전열용 저항체를 부착한 제상기(除霜機 : defroster)와 제무기(除霧機 : demister)** : 항공기 · 선박 · 기차나 그 밖의 차량용이다(**제8512호**의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 (7) **싱크로나이저(synchroniser)** : 수개의 발생기로부터 한 개의 공통 회로에 급전(給電)될 때에 사용한다.
- (8) **광산용의 전기식폭파기(electrical mine detonator)** : 수동(手動)식 발전기(직류 발전기)와 축전기(蓄電器 : condenser)로 구성되어 있다.
-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 · 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 · 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 · 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
- (11)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보통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라고 부르는 장치 : 소호 제2404.12호나 제2404.19호에 해당하는 액체나 용액을 가열 · 기화시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것이다(니코틴을 함유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그리고
- (ii)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personal electric vaporising device) : 예를 들면, 전기가열 담배시스템(electrically heated tobacco system : EHTS), 초음파 진동 장치(ultrasonic vibration device) 등으로서, 담배 제품(소호 제2404.11호의 제품)이나 그 밖의 니코틴,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하는 제품(소호 제2404.12호나 제2404.19호의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이들은 전기로 작동하는 장치로서, 연소 작용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마우스피스(mouth-piece)를 통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에어로졸(aerosol)을 만들어 내도록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장치에서 액체 · 용액 · 겔(gel) · 담배 플러그(tobacco plug)나 장치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른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전기 · 전자 구성부품[예: 발열체(예: 아토마이저(atomiser), 초음파 진동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다른 형태의 흡연 제품[예: 쉘런(cigarette) · 시가(cigar) · 흡연용 파이프나 워터 파이프]과 유사하거나 또는 필기용 펜이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과 같은 일상용품과 유사할 수도 있다. 이 물품은 재충전하거나 교체 가능한 카트리지(cartridge), 담배 플러그(tobacco plug)나 이와 유사한 것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12) **자외선 조사(照査)기기(ultra-violet irradiation equipment)** : 일반 공업용

- (13)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 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
(예: 공업용·구내의 오존화용)
- (14) 예를 들면, 손목시계·컵·인사용 카드와 같이 여러 가지의 실용적인 물품이나 그 밖의 다른 물품 속에 결합되는 **전자 뮤지컬 모듈(module)** : 이러한 모듈(module)은 대개 전자집적 회로·저항기·확성기·수은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듈(module)에는 고정된 뮤지컬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 (15)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electric fence energiser)**
- (16)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녹화기나 그 밖의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장치(cordless infrared device)**
- (17) **전자발광장치(electro-luminescent device)** :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판(plate)·패널(panel)의 상태로서 전자발광물질(예: 황화아연)을 기본재료로 하며 전자발광물질은 유도물질의 두 층 사이에 위치한다.
- (18) **디지털 비행기록장치(digital flight-data recorder)(비행기록기 : flight recorder)** : 내화성(耐火性)을 갖추고 충격에 강한 형태로서 특정 비행 중의 기록을 연속 기록하는 전자장치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일회용 전자담배[일회용 e-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 이와 유사한 일회용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서, 하우스링 안에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예: e-용액(e-liquid)·젤(gel)]을 결합하고 있으며, 다 사용하거나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폐기처분하는 것(다시 채우거나 재충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404호**)
- (b) 액체나 용액을 포함하고 있는 카트리지(cartridge)나 탱크(tank)[다른 구성부품(예: 가열용 부품이나 '아토마이저(atomiser)')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는 상관없다]로서, 전자담배나 이와 비슷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제2404호**)
- (c) 반도체나 평판 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제8486호**)
- (d) 반도체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물리기상증착기(**제8486호**)
- (e) 이 류의 주 제6호나목에 규정한 "스마트카드(smart card)"[프록시미터 카드(proximity card)나 태그(tag)를 포함한다](**제8523호**)
- (f) 모든 종류의 비(非) 전기식 흡연용 파이프[캘류멧(calumet)·치북(chibouk)나 터키식 파이프·후카(hookah) 등을 포함한다](**제9614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85.44 -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 구리로 만든 것

8544.19 -- 기타

8544.20 - 동축 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544.3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8544.49 -- 기타

8544.60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44.70 - 광섬유 케이블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 [편조(braid)·스트립(strip)·봉(bar)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비(非)금속 도체(non-metal conductor)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

- (A) 도체(conductor)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 (B) 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절연재료는 고무·종이·플라스틱·석면·운모·마이카나이트(micanite)·유리섬유의 실·방직용 섬유의 실(웁스실을 한 것인지만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바니시(vernish)·에나멜·피치·기름 등이다. 어떤 경우에 절연은 양극산화(anodising)나 유사한 처리(예: 금속의 산화물이나 염의 표면 피막의 생성)에 의하여 얻어진다.
- (C)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으로 외장(sheath)[예: 납·황동·알루미늄·강(鋼)]되며 ; 이것은 절연물의 보호 피복으로서, 가스나 기름의 절연용 채널(channel)로서, 어떤 동축케이블에서 보조적인 도체로서 사용한다.
- (D) 때로는 금속으로 외장(外裝 : armoring)[예: 나선상으로 감겨진 강이나 철의 선, 스트립(strip)]되어 있다. 주로 지하나 해저의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 (i)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 (ii)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끈 절연전선
- (iii)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 (1) **래커(lacquered)나 에나멜(enamelled)을 도포한 전선** : 일반적으로 아주 가늘고 주로 코일 권선(捲線 : winding wire)용으로 사용한다.
- (2) **양극산화(anodised) 등을 한 전선**
- (3)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용 전선과 케이블(cable)**(해저케이블·데이터전송 선과 케이블을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페어(pair)·쿼드(quad)·케이블 코어(cable 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전체가 피복으로 덮여있다. 페어나 쿼드는 각각 두 개나 네 개의 절연전선으로 함께 꼬인 채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선은 두께가 0.5mm 이하인 채색(彩色)된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단일 구리 도체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의 케이블 코어는 하나의 페어, 쿼드, 다수의 꼬인 페어나 쿼드로 구성되어 있다.
- (4) **절연된 가공케이블(insulated aerial cable)**
- (5) **영구적인 장거리 접속용(permanent long-distance connection)의 케이블** : 때때로 절연용의 가스나 기름을 채우기 위한 채널(channel)이 갖추어져 있다.
- (6) **외장(外裝) 지하 케이블(armoured underground cable)** : 방식(防蝕)용의 외장이 갖추어져 있다.
- (7) **광산의 입항에 사용하는 케이블(cable for use in mine shaft)** ; 장력의 영향을 견지하기 위하여 중방향의 외장(外裝)을 갖추고 있다.

그 밖에 이 호에는 래커로 도포되었거나 절연외장 내에 끼워 넣어서 엮은 전선을 포함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 전기기계나 제어장치에 사용하는 절연한 스트립(strip)도 포함한다.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소켓(socket)·러그(lug)·잭(jack)·슬리브(sleeve)·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 플러그(sparking plug)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된 것인지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optical fiber cable)을 포함한다. 그 피복은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광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 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제8516호**의 절연재료로 씌운 전열용저항체(예: 유리 섬유체나 석면체의 코어에 특수 합금선을 나선상으로 감은 것) ; **제8536호**의 광섬유·광섬유 다발·광섬유 케이블용의 커넥터 등을 **제외한다**.

**85.45 -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
(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전극

8545.11 -- 노(爐)용

8545.19 -- 기타

8545.20 - 브러시

8545.90 - 기타

이 호에는 그 모양 · 치수 · 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 · 카본블랙(carbon black) · 가스카본(gas carbon) · 코크스 · 천연이나 인조흑연 등]과 필요한 결합제[피치(pitch) · 타르 등] 이외에 금속가루와 같은 다른 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압출성형이나 주형(보통 가압에 의하여)과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이 호의 제품은 그 도전성을 증가시키고 마모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해 피복되어 있거나 취부(吹付)에 의하여 피복(예: 구리를 사용한다)되어 있다. 이러한 것에 아일릿(eyelet) · 터미널 · 그 밖의 접속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노(爐)용 탄소전극(carbon electrode for furnace)

일반적으로 실린더(cylinder)나 봉(rod)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것은 부착할 위치에 나사못으로 조일 수 있도록 단부(端部)에 나삿니를 파거나 암나사줄이 파여져 있다.

(B) 용접용 탄소전극(carbon welding electrode)

일반적으로 봉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C) 전해용 탄소전극(carbon electrodes for electrolysis)

이러한 것은 판 · 봉(단면이 삼각형인 봉을 포함한다) · 원통 등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전해조에 장치하거나 매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후크(hook)이나 링(ring)과 같은 부속구가 갖추어져 있다. 어떤 형의 것은 사용 중 전극에 발생되는 가스가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거나 홈이 파여져 있다.

(D) 탄소브러시(carbon brush)

이러한 것은 발전기 · 전동기 등에 사용하는 슬라이딩접촉자, 전기기관차의 집전자(集電子) 등으로 사용한다. 어떤 것은 직접적인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지지만 대다수의 것은 제3801호의 해설에 기재된 “탄소(carbon)”의 블록이나 판으로부터 절단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매우 정확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표면은 몇 백분의 1mm의 공차(tolerance)로 주의 깊게 기계 가공되어 있다. 따라서 크기 · 모양 · 고도로 다듬어진 표면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 많은 경우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금속 피복되었거나 접속자 [브래킷(bracket) · 케이블 · 터미널 · 스프링 등]가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탄소브러시는 제3801호의 해설에 기재된 어떠한 등급의 것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은을 함유한 것도 있다.

다만, 이 호에서는 흑연으로 된 외부 윤활층을 도포한 금속브러시를 **제외한다(제8535호나 제8536호)**· 브러시홀더(브러시를 갖춘 완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예: **제8503호**).

(E) 아크램프(arc lamp)와 그 밖의 램프용 탄소(lamp carbon)

아크램프(arc lamp)용 탄소는 보통 봉(rod)이나 연필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 때때로 아크(arc)의 안정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높은 광도의 출력을 공급받기 위하여나 특정 색의 화염을 주기 위하여 특수한 성분의 심(core)을 갖추고 있다. 이 호에는 전기저항 램프용의 탄소필라멘트도 포함한다.

(F) 전지용 탄소(battery carbon)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의 형에 따라 봉(rod)·판(plate)·관(tube) 등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G) 마이크로폰의 탄소로 만든 부분품(carbon parts of microphone)

이러한 것은 원판(disc)이나 그 밖의 확인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H)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노(爐)용 탄소를 함께 접속하기 위한 접속편(nipple)
- (2) 정류관용(rectifying valve)의 양극·그리드(grid)·스크린
- (3) 전열저항체 : 봉·바 등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전열기기에 사용한다.
- (4) 자동전압조정기용의 원판 모양이나 판 모양의 저항체
- (5) 탄소제의 그 밖의 접촉자나 전극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38류**)
- (b) 탄소저항기(**제8533호**)

85.46 -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10 - 유리로 만든 것

8546.20 - 도자제의 것

8546.90 - 기타

이 호의 애자(insulator)는 전류의 도체(electric current conductor)를 고정·지지(支持)·안내하는 한편, 동시에 도체를 다른 도체, 대지 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 물품(애자를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이러한 절연용 물품은 전체가 절연재료제의 것[전적으로 조립 목적만을 위해서 소량의 금속을 주조 공정 중에 장착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이라면 **제8547호**에 해당한다.

보통 애자의 사이즈와 전압간에는 관계가 있다(고전압에서는 크고 저전압에서는 작다).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의 애자의 모양은 전기적·열적·기계적인 고려에 의하여 변화한다. 외면은 물·염(salt)·먼지·산화물·연기와 같은 비절연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매끄럽게 되어 있다. 애자는 때때로 벨·아코디온(accordion)·페티코트(petticoat)·홈·실린더·그 밖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어떤 형의 것은 도전(導電:conducting)물질로 표면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기름을 넣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자는 보통 매우 견고하고 침투성이 없는 절연재료의 어느 것, 예를 들면, 도자재료[자기·동석(凍石)]·유리·용융 현무암·경화(硬化)고무·플라스틱·절연재료의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은 고정 장치[예: 금속으로 만든 브래킷(bracket)·스크루(screw)·볼트(bolt)·클립(clip)·레이스(lace)·슬링(sling)·핀·횡목(cross piece)·캡·막대(rod)·지지구(支持具: suspension or carrying clamp)]를 갖추고 있다. 다만, 피뢰기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금속제의 혼(horn)이나 보호 장치를 갖춘 애자는 **제외한다(제8535호)**.

애자는 옥외 케이블, 예를 들면, 전기통신·전력회로망·전기식의 수송시스템[철도·전차·트롤리버스(trolleybus) 등]에 사용하며 또한 옥내 설비용이나 어떤 종류의 기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애자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현수형 애자(suspension insulator), 예:

- (1) **체인 현수형 애자** : 주로 옥외의 회로망에 사용하며 수개의 절연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도체가 있는 케이블(cable)이나 선(wire)은 적당한 지지구(支持具)[고압선용 철탑의 암(arm)·현수케이블 등]에 매달려 있는 조립품의 하부에 고정되어 있다.

체인 현수형 애자에는 캡(cap)형 애자·후드(hood)형 애자·이중 페티코트형 애자; 체인 연결형 애자; 연결된 봉 모양의 애자를 포함한다.

- (2) **그 밖의 현수형 애자**(예: 볼·벨·폴리 등의 모양으로 된 애자) : 철도·트롤리버스(trolleybus)·크레인 등의 가공선용이나 공중선용의 것이다.

(B) 고정 애자(rigid insulator)

이러한 것은 지지구(支持具)[예: 금속제의 훅(hook)·핀(pin)·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가 부착되어 있거나; 지지구(支持具)는 없으나 네일·스크루(screw)·볼트(bolt) 등에 의하여 전주나 전신주 등에 부착하거나 벽·천장·마루 등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고정된 지지구(支持具)를 갖춘 애자는 둘이나 그 이상의 구성요소로 조립되어 있으며; 지지구(支持具)를 갖추지 않은 애자는 보통 단일체(single unit)이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모양 [예: 벨·원추·원통·단추·폴리(pulley)]의 것이 있다.

(C) 인입선용 애자(leading-in insulator)

인입선용 애자는 벽 등을 통하여 케이블이나 선을 유도하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모양[예: 원추 모양이나 이중 원추 모양으로 된 애자·원판 모양 애자·슬리브(sleeve)·파이프·곡관(曲管 : tubular be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서는 절연된 전기 도관과 그 연결구류를 **제외한다(제8547호)**.

85.47 - 전기기기용으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 8547.1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 8547.2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 8547.90 - 기타

**(A) 전기기기용으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나선가공 소켓(socket)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제8546호와 같은 애자(insulator)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 (i)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socket)·슬리브(sleeve) 등]을 주조과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ii)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이나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원재료(raw material)를 톱으로 켜거나 절단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하여 얻어진다. 이러한 것은 구멍이 뚫려 있거나, 나사 이(齒)가 파였거나, 줄로 깎거나 홈 등의 가공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도자기·동석(凍石)·경화(硬化)고무·플라스틱·수지를 침투시킨 종이나 판지·석면시멘트·운모]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베이스와 그 밖의 부분품; 퓨즈(fuse)용의 베이스와 지지구(支持具); 램프 홀더용의 링(ring)과 그 밖의 부분품; 저항기나 코일용의 권형(former); 터미널을 갖추지 않은 접속용의 스트립(strip)과 도미노(domino); 여러 가지 보빈용과 권선(捲線)용의 심(core);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의 본체를 포함한다.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단지 조립 목적으로 주조과정에서 결합되는 극소의 부품은 제외하고 전체가 절연재료로 만든 것)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않은 물품, 예를 들면, 축전지용의 용기·커버·격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07호).

**(B)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
(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절연재료의 내장을 조건으로** 전선을 절연과 보호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전기설비(예: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의 도관(導管)(metal tubing)을 포함한다. 절연하지 않은 금속제의 도관(導管)은 때때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부)**.

이 그룹의 도관(導管)은 절연재료제의 내부관 위에 금속제의 스트립(strip)이 나선상으로 감겨졌거나 절연재료를 내측에 도포하거나 내장한 단단한 금속제의 도관(導管)(보통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연재료는 특수한 전기절연용의 바니시(varnish)·종이나 판지·고무·플라스틱 등이다. 단순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니시로 도포한 금속제의 도관(導管)은 **제외한다(제15부)**.

이 그룹에는 이 호에 속하는 관(tubing)의 접속에 사용하는 연결구류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결구류는 절연재료로 도포되거나 내장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예: 직관 연결구·엘보(elbow)·T형 연결구·크로스오버(cross-over)].

전기 접속용의 터미널을 갖춘 T형 연결구·(cross-over) 등과 같은 연결구류는 **제외한다(제8535호나 제8536호)**.

전부가 절연재료(예: 고무·플라스틱·방직용 섬유질 실로 편조한 것·유리섬유의 실로 편조한 것)로 된 관(tubing)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것은 **제8546호**의 애자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85.48 -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A)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electrical part of machinery or apparatus)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류의 모든 전기식 부분품을 포함한다.

(a) 특정의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b) 이 류의 앞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이나 제16부의 주 제1호에 의하여 제외하는 물품

따라서 이 호에는 **특정한**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가 **아닌** 기계류의 전기식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과 전기적인 접속자·절연부분·코일·접속자나 그 밖의 특정한 전기소자를 갖춘 물품을 포함한다.

85.49 -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8549.11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 8549.12 -- 기타(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549.13 --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549.14 -- 선별되지 않은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549.19 -- 기타
 - 귀금속의 회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 8549.2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 8549.29 -- 기타
 - 그 밖의 전기·전자 조립품과 인쇄회로기판
- 8549.3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 8549.39 -- 기타
 - 기타
- 8549.9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 8549.99 -- 기타

이 호의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e-웨이스트(e-waste)]은 광범위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플러그(plug)를 가지거나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그 수명 주기(life-cycle)의 끝 지점에 가서는 e-웨이스트가 될 것이다.

이 호의 목적상 e-웨이스트는 회수(recovery)·재활용(recycling)이나 처분(disposal)에 적당한 물품만을 포함하며, 그들의 원래의 용도나 후속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리(repair)·정비(refurbishment)·보수(renovation)·재사용(reuse)·리퍼포싱(repurposing) 하기에 적당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히 중고품이라는 것만으로 e-웨이스트로 변경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e-웨이스트는 물리적으로 온전하거나(그러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폐기된 상태(예: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되거나 파괴된 것)일 수도 있다.

e-웨이스트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 웨이스트, 스크랩, 또는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 사무·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장치
- 가정용품(household appliances)
- 전동 공구(power tools)
- 전기·전자 부품(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개별 제품으로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은 벌크(bulk) 상태로 선적되며 보통 단위 수량(unit quantity) 보다는 중량(weight)으로 거래된다. 개별 물품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일반적으로 회수(recovery)·재활용(recycling)이나 폐기(disposal)용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되는 물품은 e-웨이스트로 분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호용 포장지로 개별 포장되고 박스 포장된 텔레비전, 휴대폰이나 배터리는 e-웨이스트 선적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전자 웨이스트와 그 밖의 다른 웨이스트·스크랩이 혼합된 탁송품(mixed consignments)은 여기 이 호에 분류한다.

제16부 주 제6호에서의 “원래의 용도(original purpose)”란 전기·전자 제품으로서의 기능적 용도를 말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a) 방사성 폐기물(제2844호)
- (b) 선별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제3825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

이들 소호에는 제8506호와 제8507호의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며,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이 류의 소호주 제5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명이 끝난 축전지를 포함한다.

이들 소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spent primary cell, spent primary battery)”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spent electric accumulator)”란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폐기된 상태(예: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이나 파괴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회수·재활용이나 처분용으로만 적합한 제품을 의미하며, 수명이 끝난 축전지의 경우에는 재충전할 수도 없고 충전이 오래가지도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제조자와, 제조자로부터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구입하는 폐기물 상인이나 축전지를 수집·분해하거나 일차전지를 수집하는 상인으로부터 얻어진다.

배터리 제조업체의 탁송품(consignments)은 다양한 비율의 양극판과 음극판 또는 반 조립 물품(예:직물 격리막으로 분리된 음극판과 양극판으로 구성된 코일 모양의 릴)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릴은 용기 안에 미리 조립되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완성된 배터리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오래된 배터리를 분해(dismantling)하거나 재생(reclamation)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탁송품(consignment)은 팩(pack), 판(plate)이나 릴(reel) 상태인 양극 판과 음극 판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격리판(separator)이 있는 지에는 상관없다].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금속(납·니켈·카드뮴·코발트 등), 금속 화합물, 또는 슬래그(slag)를 회수하기 위해 가공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소호 제8549.21호와 제8549.29호

이들 소호에는 전자 웨이스트(electronic waste)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면서 주로 이러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형태의 것을 분류한다.

소호 제8549.21호·제8549.31호와 제8549.91호

이들 소호에서 “일차전지와 축전지를 함유한 것(containing primary cells, primary batteries, electric accumulators)”이란 수명이 끝난 것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폐기된 상태(예: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이나 파괴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일차전지와 축전지가 전자 웨이스트 안에 함유되어 있거나, 전자 웨이스트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1.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 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 라. 제8306호의 물품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 바. 전기기기(제85류)
 - 사. 제90류의 물품
 - 아. 제91류의 물품
 - 자. 무기(제93류)
 - 차.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
 -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3.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다.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
 - 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총설

(I) 제17부의 일반적인 내용

이 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철도차량과 호버트레인(hovertrain)(제86류), 그 밖의 육상용 차량(공기 완충식 차량을 포함한다)(제87류), 항공기와 우주선(제88류), 선박·보트·호버 크래프트·수상구조물(제89류)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특정의 이동식 기계(아래의 II항 참조)

(b) **제9023호**의 전시용 모형

(c) 놀이공원의 탈것, 워터파크 놀이기구와 유원지용 오락물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완구·특정의 겨울 스포츠 용구·홍행용 차량. 이 부에서는 예를 들면, 완구용 사이클(이륜 자전거는 제외한다)·어린이용으로 설계된 페달식 차 등·완구용 보트·항공기(**제9503호**) ; 봅슬레이(bobsleighs)·터보건(toboggan)·이와 유사한 물품(**제9506호**) ; “범퍼카(dodge'em car)”·트랙터와 그 밖의 운송 차량[트레일러(특히 유원지용 오락물로 설계되고 그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예: 링-스탠드 트레일러(ring-stand trailers))를 포함한다](**제9508호**)를 **제외한다**.

추가로 이 부에서는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된 컨테이너·특정의 철도선로용 장비품·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기기(제86류)와 낙하산·항공기발진장치·갑판상륙장치(deck-arrestor)나 이와 유사한 장치와 지상비행훈련장치(제88류)와 같은 수송관련 장비의 특수물품을 포함한다.

아래의 (III)항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 부에서는 또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차량·항공기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분류한다.

(II) 자주식(自走式 : self-propelled)이나 그 밖의 이동식 기계(mobile machine)

제17부의 차량의 새시(chassis)나 수상기초구조물 위에는 수많은 기기(특히 제16부에 해당하는 형식의 것)를 장치할 수 있는데 ; 즉, 합성되는 이동식 기기의 분류는 여러 가지 요소, 특히, 기초구조물의 형식에 의한다.

예를 들면, 수상기초구조물에 하나의 기계를 장치하여 형성되는 여러 가지의 이동식 기계는 이를 제89류에 분류한다(예: 크레인선·준설선·곡물용 엘리베이터 등). 제86류나 제87류의 차량의 새시(chassis) 위에 기기를 장치하여 형성되는 이동식 기계의 분류에 대하여는 제8604호·제8701호·제8705호·제8709호·제8716호의 해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Ⅲ) 부분품과 부속품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류의 각각의 호에 분류한다. 이 부의 다른 류에서는 차량·항공기·그 관련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규정 참조). 그리고
-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1) **여러 가지 재료로 된 조인트(joint)·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과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 : vulcanise)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예: 흡반이용 가리개와 패달 커버)(제4016호)
-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예를 들면, 케이블·체인(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와 끝부분에 부착물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으나, 제87류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엑셀러레이터 케이블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케이블은 제외한다)·네일·볼트·너트·와셔(washer)·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 리프 스프링(leaf spring)을 포함한다][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 (3) **제82류의 스패너(spanner)·렌치(wrench)·그 밖의 공구**
- (4) **제8306호의 펠(예: 사이클용)과 그 밖의 물품**
- (5)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예:
 - (a) 보일러와 보일러용 기기(제8402호나 제8404호)
 - (b) 발생로(發生爐) 가스발생기(예: 자동차용)(제8405호)
 - (c) 제8406호의 증기터빈
 - (d) 제8407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e) 펌프·압축기·팬(제8413호나 제8414호)
 - (f) 공기조절기(제8415호)

제17부

- (g) 액체나 분말의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 ; 소화기(消火器)(제8424호)
- (h) 권양(捲揚 : lifting)·취급·적하·양하용의 기계[예: 호이스트·잭·데릭(derrick)]·도양·광물이나 광석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탐핑·콤팩팅·익스트랙팅이나 천공용의 기계(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30호·제8431호)
- (ij)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제8432호나 제8433호의 농업용 기계(예: 탈곡·과중·풀베기 등에 사용하는 부착물)
- (k) 제8474호에서 규정한 기계류
- (l) 제8479호의 윈드스크린 와이핑 메커니즘(windscreen wiping mechanism)

(6) 제84류의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예:

- (a) 탭(tab)·코크(cock)·밸브(valve)·이와 유사한 기구[예: 방열기(radiator)의 배수용 탭·이너튜브밸브(inner-tube valve)](제8481호)
- (b)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제8482호)
-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이나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crank shafts)·캠샤프트(cam shafts)·플라이휠(flywheels) 등]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 (a) 제8501호나 제8504호의 전동기·발전기·변압기 등
- (b)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석클러치·전자석브레이크 등
- (c) 축전지(蓄電池)(제8507호)
- (d)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점화기나 시동기기(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등)(제8511호)
- (e) 사이클이나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윈드스크린 와이핑(windscreen wiping)·제상(除霜)기·제무(除霧)기(제8512호) ; 그 밖의 차량(예: 트레인 등)용·항공기나 선박용의 전기식 신호기기(제8531호) ; 그 밖의 차량·항공기·선박용의 전기식 제상기(除霜機 : defroster)·제무기(除霧機 : demister)(제8543호)
- (f) 자동차나 철도차량·항공기 등에 사용하는 전열기기(제8516호)
- (g) 마이크로폰(microphone)·확성기·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 (h) 무선송신기와 수신기(제8525호나 제8527호)
- (ij) 전기식축전기(제8532호)
- (k) 제8535호나 제8536호의 전차용의 집전기(pantograph)와 그 밖의 집전장치와 퓨즈(fuse)·스위치·그 밖의 전기기기
- (l) 제8539호의 전기식 필라멘트 램프와 전기식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을 포함한다]

(m)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와이어링세트(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그 밖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체의 물품[터미널(terminal)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애자·전기절연용 물품 **(제8544호부터 제8548호까지)**

- (8) **제90류의 기기**(특정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 (a) 사진용이나 영화용 카메라(**제9006호나 제9007호**)
 - (b) 항행용 기기(**제9014호**)
 - (c)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제9018호**)
 - (d)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구와 그 밖의 기기
 - (e) 압력계(**제9026호**)
 - (f) **제9029호**의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택시미터·속도계와 회전속도계와 그 밖의 기기
 - (g) **제9031호**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 (9) **시계**[예: 계기판용 시계(instrument pannel clock)](**제91류**)
- (10) **무기**(**제93류**)
- (11) **제9405호**의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예: 항공기나 열차용 헤드램프)
- (12) **브러시(brush)**(예: 도로청소차량용)(**제9603호**)

(B) 전용(sole use)이나 주용도(principal use)의 기준

(1) 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 류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principal use)**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브레이크 장치·로드휠(road wheels)·흡반기 등은 실제로 제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

(2) 이 부의 둘 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어떤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두 가지 이상의 차량형(자동차·항공기·모터사이클 등)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 예를 들면, 이러한 물품에는 브레이크·조종 장치·차륜·차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한다.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 예:

- (1) 경질(硬質) 고무 이외의 가황(加黃 : vulcanised) 고무로 만든 형재(形材)(특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008호**)
 - (2) 가황(加黃 : vulcanised) 고무로 만든 전동용 벨트(**제4010호**)
 - (3) 고무타이어 · 호환성 타이어 트레드(tyre tread) · 타이어 플랩(tyre flap) · 이너튜브(inner tube)(**제4011호 부터 제4013호까지**)
 - (4) 가죽 ·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 등으로 만든 공구 백(tool bags)(**제4202호**)
 - (5) 자전거나 기구(balloon)용의 망(**제5608호**)
 - (6) 예인(曳引 : towing)용 로프(**제5609호**)
 - (7)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양탄자류(**제57류**)
 - (8) 강화 유리나 접합 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않은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7007호**)
 - (9) 백 미러(**제7009호**나 **제90류**, 해당 해설부분 참조)
 - (10) 차량류의 헤드램프에 사용하는 틀을 붙이지 않은 유리(**제7014호**)와 일반적으로 **제70류**의 물품
 - (11) 속도계 ·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 등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샤프트(flexible shaft)(**제8483호**)
 - (12)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
-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목재나 콘크리트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받침목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가이드트랙섹션(guide-track section)(제4406호나 제6810호)
 - 나. 제7302호의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건설용 재료
 - 다. 제8530호의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용 기기
2.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포함된다.
 -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금속으로 만든 바퀴·외륜(hoop)·윤심(hub)과 그 밖의 차륜 부분품
 - 나. 프레임(frame)·언더프레임(underframe)·보기(bogie)[대차(臺車)]·비셀보기(bissel-bogie)
 - 다. 차축함과 제동기
 - 라. 차량의 완충기·축과 그 밖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
 - 마. 차체
3. 주 제1호의 물품은 제외하고는 제8608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포함한다.
 - 가. 조립된 선로·전차대(轉車臺)·플랫폼용 완충기·로딩게이지(loading gauge)
 - 나. 완목(腕木)신호기, 기계식 신호관, 건널목용·신호용·전철용(轉轍用) 제어기, 그 밖의 철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전등을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총설

이 류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과 여러 가지 철도선로[협궤(狹軌 : narrow gauge)철도·모노레일 등을 포함한다]용의 일부 장비품을 포함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도 포함되며,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여러 가지 교통신호·안전·교통관제용 기기(주차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의 전체를 통해서 “철도(railway)”와 “궤도(tramway)”란 강(鋼)으로 만든 궤조를 사용하는 보통 철도와 궤도 뿐만 아니라, 자기부유(magnetic levitation)나 콘크리트 궤도(concrete track)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가이드 시스템을 말한다.

이들 여러 가지 물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 기관차·전동기를 갖춘 철도차량이나 전차차량·레일 카와 같은 여러 가지형의 자주식(自走式: self-propelled) 철도차량(제8601호부터 제8603호까지). 또한 제8602호에는 탄수차(炭水車: locomotive tender)도 포함한다. 두 가지의 동력형태로 작동되는 기관차는 사용하는 주동력 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B) 철도나 궤도 선로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다](제8604호)
- (C) 여러 가지 형식의 견인차(철도나 궤도용의 객차와 수하물차·철도나 궤도용의 화차·왜건과 트럭 등)(제8605호와 제8606호)
- (D) 철도용이나 궤도용의 기관차와 차량의 부분품(제8607호)과 철도나 궤도선로용의 장비품과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도로·철도나 그 밖의 차량·선박이나 항공기에 사용하는 신호용이나 관제용 기기(제8608호)
- (E) 한 가지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제8609호)

이 류에서는 가이드 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호버트레인(hovertrain)], 이들 차량의 부분품과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호버트레인 수송 장치용의 신호·안전·교통관제기기도 포함한다(제17부의 주 제5호 참조).

불완전하거나(incomplete) 미완성(unfinished)의 차량이라도 차량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하는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한다. 이들 차량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1) 기관차나 전동차를 갖춘 철도나 궤도차량으로서 동력장치·계기류·안전장치·장비품을 갖추지 않은 것
- (2) 의자(seat)가 없는 객차
- (3) 현가장치(懸架裝置: suspension)와 차륜(wheel)을 갖춘 화차차대

한편, 전동기를 갖춘 철도나 궤도 차량의 차체, 밴(van)·왜건(wagon)·트럭의 차체, 탄수차(炭水車: locomotive tender)의 차체로서 **언더프레임(underframe)에 장착되지 않은 것**은 이를 철도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8607호).

이 류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a) **제9023호**의 전시용의 철도차량모델
- (b) 철도 차량에 장착한 중포(**제9301호**)
- (c) 장난감 기차(**제9503호**)
- (d) 놀이공원의 탈것·위터파크 놀이기구나 유원지용 오락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차량을 구성하지 않는 설비(**제9508호**)

86.01 -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1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8601.2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이 호에는 필요한 전기에너지가 차량 자체에 갖추어져 있는 축전지로부터 공급되거나 레일이나 오버헤드 케이블(overhead cable)과 같은 외부 도체로부터 공급되는 여러 가지의 전기식 기관차를 포함한다.

86.02 -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2.10 - 디젤 전기기관차

8602.90 - 기타

(A) 기 관 차(locomotive)

이 그룹에는 동력장치의 형식(증기엔진·디젤엔진·가스터빈·석유엔진·압축공기식 엔진 등)이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8601호**의 외부 전원이나 축전지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관차를 **제외한** 여러 가지형의 철도용 기관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관차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다음 세 가지 형의 **디젤기관차(diesel locomotive)**

(a) **디젤-전기식 기관차(diesel-electric locomotive)** : 이것은 디젤 엔진이 전기를 발생하도록 발전기를 구동시켜 주며, 이 전기는 트랙션 모터(traction motors)가 차륜을 구동시키는 동력으로 변한다.

(b) **디젤-유압식 기관차(diesel-hydraulic locomotive)** : 이것은 디젤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유압장치를 사용하는 바퀴에 전달한다.

(c) **디젤-기계식 기관차(diesel-mechanical locomotive)** : 이것은 디젤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클러치나 유체 플라이휠(fluid flywheel)과 기어박스를 통해서 바퀴에 도달한다.

(2) 모든 형태의 **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 : 전기식 구동장치를 사용하는 터빈 기관차·탱크기관차와 화력을 쓰지 않는 기관차[즉, 공업용 플랜트에서 충전하는 보일러 대신으로 증기 저장통(steam reservoir)을 갖춘 것]도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보기(bogie)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통 단지 두 개의 구동축(driving axle)이 부착되는 중간출력을 갖는 특정의 기관차를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역에서 왜건(wagon)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며 철로를 연결시키는 공업설비로서 사용한다.

(B) 탄수차(炭水車)

탄수차(炭水車)는 보일러에 필요한 물과 연료를 운반하는 증기기관차에 결합된 차량이다. 이들은 원래 두 개 이상의 축에 지지된 프레임(frame)과 물통과 석탄 통이나 연료유 탱크용의 밀폐된 탱크로 구성하는 금속판제의 상부 구조물로 구성된다.

*
* *

도로와 궤도의 양쪽을 주행하도록 조립된 트랙터는 **제외한다(제8701호)**.

86.03 -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8603.90 - 기타

자주식(自走式)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는 동력장치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차와는 상이하다. 이들 차량은 단순히 여행용으로 설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형의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을 각각 하나 이상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차량의 주요한 특징은 기관실의 한쪽이나 양쪽, 또는 중앙부에 있는 높은 곳, 즉 사령탑과 같은 곳(conning-tower)에 부착되어 있는 점이다.

이 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자주식(自走式)의 객차와 화차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A) 전동객차(electrically-propelled coach) : 이 전동객차는 전기에너지를 예를 들면, 가공선(overhead cable)의 경우 집전기(pantograph)나 트롤리를 통하거나 제3궤도의 경우 보기(bogie)에 장치된 집전자를 통하여 고정된 외부전원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전차 : 이러한 것은 때때로 홈(slot rail)에 있는 두 개의 안내 레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류가 "플라우(plough)"로 알려진 특수한 장치를 거쳐 집전된다.

(B) 레일 카(rail-car) : 그 자체의 동력에 의하여 주행되는 동력 자장식 차량으로서 디젤 엔진을 갖춘 것이나 그 밖의 내연기관을 갖춘 것

어떤 레일 카는 경질(solid) 타이어나 공기를 넣은 타이어가 갖추어져 있으며 그 밖의 것들은 래크레일타입(rack-rail type)의 것이다.

(C) 축전지 구동의 자주식(自走式) 차량

이 호에는 **전기자이로 궤도차(electro-gyro vehicle)**도 포함한다. 이 장치의 원리는 고속 회전의 플라이휠(flywheel)에 운동에너지를 축적시키는 원리에 의한 것으로서 이 에너지는 전류의 형태로 구동모터(driving motor)에 전달한다. 이 장치는 일정하게 한정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경궤도차(light rail-car)나 궤도전차(tram)에 이용한다.

이 호에서 모터는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히 바퀴를 바꾸고 조타장치(steering)를 잠금으로써 레일 카(rail-car)로 변환시킬 수 있는 도로주행용의 원동기를 갖춘 차량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8702호).

86.04 -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 · 기중기차(crane) · 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 · 트랙 라이너(trackliner) · 검사차 · 궤도검사차]

이 호에 분류하는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는 상관없다]은 예를 들면, 철도의 고정 선로와 궤도 주위의 구조물의 설치 · 보수 · 유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 호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1) 공구 · 공작기계 · 발전기 · 리프팅 기계[잭 · 호이스트(hoist) 등] · 용접기 · 체인 · 케이블 등을 갖춘 작업차
- (2) 응급 작업차와 그 밖의 기중기차(crane lorry) ; 기관차나 객차를 인양하는 기중기차 ; 레일을 리프팅하거나 부설하기 위한 기중기차 ; 역구 내에서의 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중기차
- (3) 윈치트럭(winch truck)
- (4) 청소용이나 자갈 따위를 다지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 장치를 갖춘 차량
- (5) 궤도용의 시멘트 혼합기기를 갖춘 트럭(전선용 철탑 등의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한)
- (6) 계량대의 측정용 트럭
- (7) 전선의 가설과 유지를 위한 발판 차량(scaffold truck)
- (8) 제초용 약제 분사차
- (9) 궤도유지용의 자주식(自走式) 차량[특히 철도용의 트랙라이너(trackliner)] : 한 개 이상의 엔진을 갖추고 있어서 궤도부설장치 · 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 등 차량에 장착된 작업기계에 동력을 공급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을 구동시킬 뿐 아니라 작업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자주식(自走式)의 장치로 궤도를 따라 속히 이동시킬 수 있다.
- (10) 엔진 · 브레이크 등의 작동검사용의 자동기기와 같은 특수 장치를 갖춘 철도 검사차(예: 적재 하중의 측정용과 레일 · 궤도바닥 · 다리 등의 결함 검사용의 것) ; 운행 중에 궤도의 여러 가지 불규칙 상태를 기록하는 트랙 검사용 차량
- (11) 기계구동식의 궤도검사용 트롤리[모터를 갖춘 레일 사이클(rail cycle)을 포함한다]로서 철도 역무원이 궤도유지용으로 사용하는 것 : 이들은 보통 내연기관을 갖추고, 자주식(自走式)이며, 유지 작업 요원과 궤도를 따라 운반되는 자재의 양쪽을 급히 운반하는 수단으로 제공한다.
- (12) 비기계 구동식의 궤도검사용 트롤리[레일사이클(rail cycle)을 포함한다] : 철도 검사 요원이 사용한다(예: 손이나 발 구동식의 것).

*
* *

바퀴가 달린 플랫폼에 단순히 장착되고 철도나 전차의 하부 구조에 장착되지 않은 기계 · 측정기구와 그 밖의 장치(즉, 사실상 철도나 궤도차량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것) 이 호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열거 호에 분류한다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등).

86.05 -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보통 여객열차에 연결되는 형의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철도나 궤도차량의 그룹 [전차에 연결되는 트레일러객차(tramway trailer coach)와 케이블객차(funicular (cable) railway coach)]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을 것을 포함한다.

- (1) 침대차·식당차·전망차·오락차(특히, 연회·댄스 등에 적합한 설비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객용 객차
- (2) 케이블객차[funicular (cable) railway coach]
- (3) 전차에 연결되는 트레일러객차(tramway trailer coach)
- (4) 광산의 지하운송에서 사용하는 특수객차
- (5) 철도원의 거주객차
- (6) 화차와 객차와 화차를 함께 연결시킨 화객차
- (7) 철도 우편객차
- (8) 구급차·병원차·X선차나 이와 유사한 객차
- (9) 감방객차
- (10) 장갑객차
- (11) 무선(radio)기기나 전신기기를 갖춘 특수객차
- (12) 장치·기계·축소모형(scale model)을 갖춘 교육용 객차(예: 직원 교육용)
- (13) 전시회용 객차

86.06 -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8606.3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 기타

8606.91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8606.92 -- 덮개가 없는 것으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606.99 -- 기타

이 호에는 철도망[여러 가지 궤간(gauge)의 것]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을 분류한다. 또한 갭도 내·건물의 부 지내·공장 내·창고 내 등에서 궤도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소형의 차량이나 트럭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형의 차량이나 트럭은 일반적으로 스프링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왜건(wagon)·캐리지(carriage) 등과 다르다.

보통의 무개화차[평면 트럭(flat truck)·경사식(傾斜式) 왜건(tipping wagon) 등]와 유개차 이외에 이 호에는 다음의 특수형의 화차를 포함한다.

- (1) 탱크 왜건(tank wagon)과 이와 유사한 것[예: 저장왜건(reservoir wagon)·캐스트 왜건(cask wagon)]
- (2) 절연이나 냉장용의 화차
- (3) 자동 양하식 화차[경사식(傾斜式) 왜건(tipping wagon)·개저식(開底式) 왜건(hopper wagon) 등]
- (4) 중량화물 수송용의 중심이 낮은 평면 트럭(underslung flat truck)
- (5) 목재운반용 화차
- (6) 석제품 등을 부착한 저장차와 화학약품의 운반용 저장차
- (7) 말(마)의 수송차
- (8) 더블 데크 화차(double deck wagon)(예: 차의 수송에 사용한다)
- (9) 살아 있는 가금류(poultry)나 어류의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비된 화차
- (10) 다른 화차를 운반하는 플랫폼 화차
- (11) 여러 가지 협궤(narrow gauge)용 화차
- (12) 광산용 화차
- (13) 레일·대들보(girder) 등의 수송용 화차
- (14) 궤도용 화차를 운반시키기 위하여 레일을 부착한 화차
- (15) 고방사능제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화차

가이드레일(guide rail)을 부착한 특수 화차에 의하여 수송되는 “도로와 레일 겸용(road-rail)”의 트레일러는 **제외한다(제8716호)**.

86.07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보기(bogie) · 비셀보기(bissel-bogie) · 차축 · 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 8607.11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 8607.12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 86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8607.21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8607.29 -- 기타
- 8607.30 - 혹과 그 밖의 연결 장치 · 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 기타
- 8607.91 -- 기관차용
- 8607.99 -- 기타

이 호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 (i) 위에서 언급한 제8601호부터 제8606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 철도용이나 궤도용의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두 개의 축이나 그 이상의 축을 갖춘 보기(bogie)와 하나의 축만을 갖춘 프레임(frame)으로 구성된 비셀보기(bissel-bogie)
 - (2) 직선이나 크랭크를 부착한 축(조립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 차륜이나 그 부분품[윤심(hub) · 금속타이어 등]
 - (4) 축박스(axle-box)(윤활유나 그리스 박스로 알려져 있다)과 이들의 부분품[예: 축박스의 본체]
 - (5) 여러 가지 브레이크장치 :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수동브레이크 : 각 차량을 직접 제동하는 것(레버브레이크와 스크루브레이크)
 - (b) 열차의 각 차량을 단일 제동하는 관통제동장치 : 여기에는 압축공기 제동장치와 진공 제동장치를 포함한다.
 - (c) 제동쇠기(shoe) · 실린더 · 레버 등을 포함한 제동장치의 부분품
 - (6) 완충장치

- (7) 커플링기어(coupling gear)[예: 훅(hook)·스크루(screw)나 체인 모양의 드래프트 기어] ; 어떤 연결장치는 자동식일 수도 있다.
- (8) 프레임(frame)과 이들의 부분품[세로대(longeron)·크로스거더(cross-girder)·축상자 가이드(axle-box guide) 등] ; 한 부분으로 구조된 프레임(frame)
- (9) 연결통로와 접속 플랫폼
- (10) 모터구동식이나 비자주식(非自走式)의 철도나 궤도의 차량용 차체(언더프레임에 장착되지 않은 것)(예: 객차용·트럭용·왜건용 등) ; 그 차체의 부분품[예: 객차나 트럭의 도어·칸막이·왜건의 경첩을 붙인 외측·측면 지주(side stanchion)·러닝보드(running board)·탄수차(炭水車 : tender)의 수조 등]
- (11) 제동 장치나 가열장치용의 커플링 헤드(coupling head)를 갖춘 파이프
- (12) 보기(bogie)의 유압식 쇼크업소버(shock-absorber)

다만,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앵글(angle)·셰이프(shape)·섹션(section)·시트(sheet)·플레이트(plate)와 그 밖의 프레임(frame)의 부분품과 관(tube·pipe) 등은 명백히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가공하지 않는 한 제15부**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86.08 -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A)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fixture and fitting)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조립된 트랙(assembled track)** : 즉, 레일이 이미 받침목(枕木 : sleeper)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랙은 접속점·전환이나 분할전철기·커브·직선형의 형태로 놓이게 된다.
- (2) **전차대(turntable)(전기식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즉, 보통 원형 모양의 대형 플랫폼으로서 중심 주위로 회전되며 철도용의 트랙과 함께 부착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것은 플랫폼의 주위를 돌려주는 롤러(roller)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관차 등은 전차대(turntable) 위로 회전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 호에는 건축장·채석장 등에서 사용하는 협궤(narrow gauge)철도용의 수동식 전차대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기관차나 화차를 일방의 궤도에서 타방의 궤도로 이전시키는 천차기(遷車機 : traverser)는 **제외한다**. 철도차량 처리용의 이러한 천차기(遷車機)와 그 밖의 기계[예: 왜건 티퍼(wagon tipper)·왜건 푸셔(wagon pusher)]는 **제8428호**에 해당한다.

- (3) **플랫폼 완충장치(platform buffer)** : 이것은 철도 차량이 종착점에 도착되기 전에 정지하지 않는 경우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선로의 끝에 있는 차량을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유압식이나 스프링식의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은 종착역의 콘크리트부에 깊이 매립되어 있거나 조차장의 튼튼한 구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다.
- (4) **로딩게이지(loading gauge)** : 이것은 아치형의 구조물로서 그 아래를 지나는 열차가 규정된 최대 허용높이와 넓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 호에는 목재 받침목(**제4406호**)·콘크리트 받침목(**제6810호**)·**제7302호**에서 규정한 철강으로 만든 받침목·궤도나 그 밖의 조립되지 않은 철도선로의 건설재를 **제외한다**(해당 해설 참조).

가공(架空) 전선(overhead cable)을 지지하는 철탑과 문형의 철주는 철도나 궤도용 장비물로 간주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제6810호**·**제7308호** 등에 분류한다.

(B)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약간 거리를 둔 관제소로부터 레버·크랭크·봉·선·체인 등의 조작이나 유압-공기압축식(hydro-pneumatic) 장치나 전기식 모터를 이용하여 신호 등이 조작되는 기기를 분류한다. 또한 전기-공기압축식의 기기(예: 철도용)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형식에 있어서 신호기나 전철기는 공기압축식의 동력엔진에 의하여 작동되며, 모터의 실린더로 공기가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것은 신호상자 안에 있는 전기제어반에 의하여 차례로 제어되는 전자식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신호기와 그 공기작동식 장치는 이 호의 기계식 장치로 간주한다. 그러나 전기제어반(electric control board) 등은 **제85류**에 분류한다.

“신호용 기기(signalling equipment)”는 차량·선박·항공기에 지시를 전달할 때마다 두 가지 이상의 양상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기계적인 특징을 갖지 않은 도로·철도 등의 신호판(예: 속도 제한·방향·비탈 신호판)은 **제외하며** ;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421호**나 **제8310호**).

위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기계식이나 전기기계식으로 작동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를 포함한다.

- (1) **신호상자장치(signal box equipment)** : 전달용의 휠·봉·선 등을 갖춘 많은 제어 레버로 구성되는 완전 장치를 프레임(frame)에 장치시킨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연동장치는 신호기나 전철기가 충돌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위험방지장치를 갖추고 있다.
- (2) **완목(腕木 : semaphore)신호기·신호용 디스크·완전한 신호용 포스트·신호용 갠트리(signal gantry)**
- (3) **제어장치나 슬로팅 레버 메커니즘(slotting lever mechanism)** : 상호조정작동을 가능하도록 상호의존 신호기에 부착한다.
- (4) 전철기나 신호기 등 조작에 사용하는 **트랙사이드 메커니즘(trackside mechanism)**[레버·페달·크랭크(crank)·그 밖의 형의 그라운드 프레임(ground frame) 등]
- (5) **전철기 검정기(point detector)** : 이러한 것은 전철기의 동작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으로서 ; 이러한 동작은 신호소에 거꾸로 전달되어 신호수가 그것에 의하여 전철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6) **전철기 록(point lock)과 록킹바(locking bar)** : 이들 장치는 궤도 그 자체에 부착되어 있으며, 열차가 통과할 때 자동적으로 완목(腕木 : semaphore)신호기를 잠가주어 열차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전철기(轉轍機)가 신호소로부터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 (7) **레일 브레이크(rail brake)** : 이 장치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예를 들면, 조차장에 입환되는 화차의 배열을 늦추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보통 본질적으로 궤도의 각 레일에 부착된 일조의 바(bar)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압식이나 공기압축식으로 제어되어 그 바 장치가 있는 궤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차륜에 제동압력을 미치도록 하는 장치이다.
- (8) **탈선기(derailer)와 정지장치(stop block)** : 이들 장치를 레일에 대지 않고 미끄러져나가게 하면 화차를 통과하게 해 주지만, 레일의 주행면 위에 놓고 미끄러져 나가게 하면 정지장치로서 작동하거나 궤도 밖으로 화차를 “점프(jump)”하도록 하는 탈선기(deflecting blade)로 작동한다.
- (9) **열차정차장치(train stop)** : 이러한 것은 보통 궤도 옆에 붙어 있고 압축공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T형의 바장치로 구성된다. 이 바는 신호기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음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 바가 그 위치에 올려지며,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올 때에 열차에 있는 제동장치 레버가 걸리게 “트립(trip)”된다.
- (10) **자동안개신호기(automatic fog-signalling apparatus)** : 이 장치는 보통 공기압축식으로 조작되는 것으로서 위험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궤도 위에 안개신호를 장치하는 것이다.
- (11) **차단기의 게이트를 상하로 개폐시키는 평면교차 관계장치** : 이 장치는 보통 수동(手動)식의 크랭크 휠과 치차장치로 구성되거나 신호나 전철기제어장치를 갖춘 신호소로부터 조작되는 지렛대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교차 차단기 자체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철강으로 만든 것이면 **제7308호**, 목재로 만든 것이면 **제4421호**). 다만, 차단기의 개폐여부를 알려주는 기계식이나 전기기계식으로 조작되는 신호기는 이 호에 해당한다.

(12) 도로나 해상교통에 “정지(stop)”와 “진행(go)”의 신호를 표시하도록 설계된 **수동(手動)식**
이나 전기기계식으로 작동되는 신호기

부분품

이 호에는 위에서 규정한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예: 회전식 플랫폼
· 신호용 암(arm)과 디스크·제어레버·전철기록 케이스·연동식 슬로트메카니즘(interlocking
slot mechanism)].

*
* *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a)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체인과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그 밖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제39류**에 분류한다) ; **제15부**에 해당하는 범용성의 재료(선과 봉과 같은 것)와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궤도 측면 제어 기구를 전철기(轉轍機 : switch blade)에 접속 시키기 위하여 레일 밑에 배선한 전철봉은 철강제의 그 밖의 특정의 철도 선로 건설재료와 함께 **제7302호**에 분류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 (b) 신호용 램프(**제8530호**나 **제9405호**)
- (c) 사이렌·안개경적(foghorn)과 그 밖의 음향신호기기(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d) 차량·선박 등의 갑판에 설치된 신호기(예: 열차의 경적 신호기·선박용의 비상지점 신호기기)(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컨테이너[리프트밴(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캐스터(caste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형은 나무로 만든 것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서 문짝을 갖추었거나 옆을 떼어낼 수 있는 대형 박스로 되어 있다.

- (1) 가구 이동용 컨테이너
- (2) 부패성 식품이나 물품용의 단열 컨테이너
- (3) 액체나 가스 운반용 컨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여러 가지형의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고 ;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4) 석탄·광석·부석·벽돌·타일 등의 벌크(bulk)화물 운송용 오픈컨테이너(open container), 이러한 것은 때때로 양하(unloading)의 편리를 위하여 바닥이나 측면에 경첩이 달려 있다.
- (5) 특수한 물품, 특히, 유리제품·도자제품 등과 같은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살아있는 동물의 수송에 사용하는 특수형식의 것

컨테이너는 그 용적이 보통 4m³에서 145m³까지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보다 작은 특정형의 것도 있으나 보통 그 용적은 1m³ 이상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케이스·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도로-레일 겸용(road-rail) 트레일러[주로 도로 트레일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이드레일(guide rail)을 갖춘 특수 철도화차로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제8716호**).
- (c) 모듈화된 빌딩 유닛(**제9406호**)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류에는 궤도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철도용이나 궤도용 차량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트랙터”란 주로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 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호환성 장치로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새시는 제8706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로 분류한다.
4. 제8712호에는 각종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3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8708.22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에 한정한다)

총설

이 류에는 **제16부**에 해당되는 특정 이동식 기계를 **제외하고** 다음의 차량을 분류한다(제8701호·제8705호·제8716호 해설 참조).

- (1) 트랙터(제8701호)
-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나 제8703호)나 화물 수송용(제8704호)이나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
- (3) 권양(捲揚: lifting)이나 취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self-propelled)의 작업 트럭으로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의 것과 철도역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트랙터(제8709호)
- (4) 자주식(自走式)의 장갑차(제8710호)
- (5) 모터사이클과 사이드 카; 사이클과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
- (6) 유모차(제8715호)
- (7) 트레일러(trailer)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그 밖의 차량으로서 기계식으로 구동되지 않는 것. 즉, 다른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 손으로 밀거나 끄는 차량,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이다(제8716호).

이 류에는 육상 주행용이나 육상과 일부 지역의 수면상(습지 등)의 양방 주행용으로 설계된 공기 완충식 차량도 분류한다(제17부의 주 제5호 참조).

제17부
제87류

자동차의 분류는 모든 부분품을 완성 자동차로 결합한 이후에 수행되는 작업[예: 차대번호 부착(fixation), 브레이크 시스템 충전, 브레이크로부터 공기 빼기, 스티어링 부스터 장치(과워 스티어링)·냉각장치·공기조절장치의 충전, 헤드라이트 조절, 차륜 배치 조절(wheel geometry regulation : alignment), 브레이크의 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통칙 제2호가목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미완성(unfinished)의 차량으로서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한다[통칙 제2호가목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차륜이나 타이어와 배터리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 (B) 엔진이나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 (C) 안장(saddle)과 타이어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이 부 총설 참조).

*
* *

수륙양용 자동차(amphibious motor vehicle)는 이 류의 자동차로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주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항공기(aircraft)로 분류한다(**제8802호**).

이 류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다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횡단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절단되어 있으며, 전시용으로 설계된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제9023호**)
- (b)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설계된 바퀴달린 완구와 어린이용 자전거[어린이용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 (**제9503호**)
- (c)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겨울철 스포츠용 기기(**제9506호**)
- (d) 놀이공원의 탈것이나 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제9508호**)

87.01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 8701.10 -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 8701.2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 8701.22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8701.23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8701.24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 8701.29 -- 기타
- 8701.30 - 무한궤도식 트랙터
 -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 8701.91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이하인 것
- 8701.92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초과 37킬로와트 이하인 것
- 8701.93 -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8701.94 - 엔진의 동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3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701.95 - 엔진의 동력이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이 호에 분류하는 **트랙터(tractor)**란 본래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륜식이나 무한궤도식의 차량을 말한다. 트랙터는 그 주요한 용도에 관련하여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춘 것이나 보조기능으로서의 작업도구를 부착시키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진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권양(捲揚: lifting)·굴착·레벨링(leveling)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품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보강된 주행부(설사 주행부가 해당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끌거나 밀기위하여 사용한다 하여도)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트랙터(**제8709호**에 해당되는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를 **제외한다**)가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영농용·임업용·도로 주행용의 트랙터·토목건설용의 중작업을 하는 트랙터·윈치트랙터(winch tractor) 등으로서 그 추진방식(내연기관·전동기 등)이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 호에는 도로 위나 궤도 위의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가 포함한다. 다만, 궤도전용으로 설계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 해당하는 트랙터는 자동차 차체(몸체)를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용 좌석이나 운전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에는 공구상자·농기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부속장치·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semi-trailer)의 연결 장치[예: 기계식 말(mechanical horse)와 이와 유사한 견인장치 위에]나 탈곡기와 원형 톱 같은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 전도(傳導)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트랙터의 새시(chassis)는 차륜·무한궤도·차륜과 무한궤도가 결합된 것에 장착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조종 축에만 차륜이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single axle tractor)**도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나 두 개의 바퀴에 한 개의 구동축을 갖춘 소형의 농업용 트랙터이며; 이러한 소형 트랙터는 보통의 트랙터와 같이 범용성의 동력 전도(傳導)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교환식 기구를 갖추어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트랙터에는 보통 운전자의 시트가 없고 조종은 두 개의 핸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어떤 형의 것은 운전석을 붙인 일륜식이나 이륜식의 트랙터 뒷부분의 접속 차량을 갖춘 것도 있다.

이와 유사한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는 산업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윈치를 장착한 트랙터(tractor fitted with winch)**를 포함한다(예: 수렁에 빠진 차량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 나무의 뿌리를 뽑거나 나무를 끌어당기기 위하여 ; 농기구의 원거리 견인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예를 들면, 포도원이나 임업농장에서 사용하는 스트래들형 트랙터[지주식(支柱式) 트랙터(stilt tractor)]를 포함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크레인·리프팅용 택클(lifting tackle)·윈치(winch) 등을 갖춘 구난차(breakdown lorry)도 **제외한다(제8705호)**.

다른 기계가 부착된 트랙터(tractor fitted with other machinery)

호환성 장치(interchangeable equipment)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 기계(쟁기·씨레·괭이 등)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는 분리시켜 이 호로 분류한다.

트랙터와 공업용 작업도구도 해당 트랙터가 본래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농업용 트랙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용도구의 상하 등의 조작을 행하는 간단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이것을 분리시켜 분류한다. 이 경우 호환성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트랙터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한편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를 연결시킨 모터 로리(motor lorry), 세미트레일러를 연결시킨 트랙터, 제84류의 작업기계를 세미트레일러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시킨 중(重)작업용 트랙터에 대해서도 견인부분은 이 호에 분류하고, 한편으로 세미트레일러나 작업기계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제8425호·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제8432호**에 열거한 기계의 주행부로서,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그 조작장치가 특별히 상호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일체의 기계를 형성시키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로더(loader)·불도저(bulldozer)·모터를 갖춘 쟁기 등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취급용·굴삭용 등으로 설계된 기계의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주행부는 그 특수한 구조상의 특징[모양·샴시(chassis)·운전방식 등]에 의하여 이 호의 트랙터와 구별될 수 있다. 트랙터 형의 주행부에 대하여는 완성품의 구조와 끌거나 미는 것 이외의 기능 때문에 특별히 설계된 장치에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작업기계를 조작하는 장치를 지지(支持)시키기 위하여 차대의 프레임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프레임(frame)에 보통 용접에 의하여 부착시킨 튼튼한 기계요소[지지(支持 : support)용의 블록·플레이트(plate)나 빔·선회(旋回 : swivelling)식 크레인의 플랫폼]가 결합된 주행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이러한 주행부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부분품을 몇 개 갖추고 있다. 작업기계 조작용의 유압장치가 내장된 동력장치 ; 특수 변속기(예: 역전할 때의 최고속도가 정전할 때의 최고 속도보다 늦지 않은 것) ; 유압 클러치·토크 컨버터(torque converter) ; 밸런스용 평형추(平衡錘) ; 주행부의 안전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긴 궤도 ; 뒷부분에 장착된 엔진용의 특수 프레임 등

○
○ ○

[소호해설]

소호 제8701.10호

제8701호 해설 여섯 번째 문단과 일곱 번째 문단을 참조할 것

소호 제8701.20호

이 소호에서, “도로주행식 트랙터(road tractor)”란 세미트레일러를 먼 거리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주행식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는 다양한 명칭[예: 트레일러 트럭(articulated lorry), “트랙터-트레일러(tractor-trailer)” 등]으로 알려진 결합품을 형성한다. 이 자동차는 보통 디젤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road) 교통망[즉, 가로수길(avenue)·큰길(boulevard)·자동차길(motorway)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도로(street)] 위에서 짐을 완전히 실은 트레일러들을 끌고 도시의 교통 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운전자와 승객용으로 폐쇄된 운전실(때때로 수면용 설비도 있을 수 있다), 각국 내에서 승인된 전조등(headlamp)과 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의 경우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세미트레일러 사이의 급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오륜커플링(fifth wheel coupling)을 갖추고 있다.

유사한 자동차로서 세미트레일러를 짧은 거리를 견인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8701.91호부터 제8701.95호까지에 분류한다).

소호 제8701.30호

이 소호에는 또한 차륜과 무한궤도가 결합되어 있는 트랙터를 포함한다.

소호 제8701.91호부터 제8701.95호까지

이 소호에는 세미트레일러를 짧은 거리를 견인하는데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는 다양한 명칭[예: “터미널 트랙터(terminal tractor)”, “포트 트랙터(port tractor)”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정된 영역 내에서 트레일러를 배치시키거나 정기적으로 왕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자동차는 소호 제8701.20호의 도로주행식 트랙터의 설계 목적인 장거리 도로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자동차는 보통 최대 속도가 50km/h를 초과하지 않는 디젤엔진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운전자만을 위한 단일 좌석의 작은 폐쇄 운전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도로주행식 트랙터와 구별이 가능하다.

87.02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 8702.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 8702.2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8702.3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8702.4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 8702.90 - 기타

이 호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모든 자동차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모터 버스, 코우치(coach), 트롤리식 버스(trolleybus)와 자이로버스(gyrobus)를 포함한다.

이 호의 자동차는 모든 형태의 모터(피스톤 내연기관, 전기 모터, 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동기를 결합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기계적 추진 목적으로, 이들 자동차는 소모성 연료와 전기 에너지/전력 저장 장치[예: 축전지(electric accumulator), 축전기(capacitor), 플라이휠/발전기] 모두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파워트레인 구성(예: 병렬 하이브리드, 직렬 하이브리드, 동력분기나 직렬-병렬 하이브리드)과 하이브리드화의 정도(즉, 완전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 모터나 축전지 팩에 의하여 동력을 얻는 모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트롤리식 버스(trolleybus)는 가공 전선(架空電線 : overhead wire)으로부터 전류를 얻으며, “자이로버스(gyrobus)”는 운동에너지를 고속회전하는 플라이휠에 저장하여 그 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 구동하여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 전류를 원동기에 공급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이 호에는 또한 모터는 변환시키지 않고 단순히 차륜을 바꾸고 조타장치(steering)를 잠금으로써 레일 카(rail-car)로 변환시키는 모터 코우치(motor coach)도 포함한다.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8703.10 -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 8703.5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8703.7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8703.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 8703.90 - 기타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 그러나 **제 8702호**의 자동차(motor vehicle)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 · 증기기관 · 전동기관 · 가스터빈 · 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a)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예: 스노우모빌)

(b)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2) 그 밖의 차량

(a) **자동차**(예: 리무진·택시·스포츠카와 경주용 자동차)

(b) 구급차·최수 호송차와 영구차와 같은 **특수운송차량**

(c) **모터홈**(캠퍼 등),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침실·주방·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

(d) 튜브새시를 가진 **삼륜자동차**로서, 모터카 형태의 조향시스템[예: 액커만(Ackerman) 원리에 근거한 조향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이 호에서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이란 최대 9인(운전자를 포함한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춘 차량으로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화물의 두 가지 수송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지의 여부는 화물 운반(제8704호) 목적이 아닌 승객운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나타내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이며 운전사와 승객을 위한 구역으로 단일의 폐쇄된 내부공간을 갖고 있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또 다른 구역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multipurpose)” 자동차[예: 밴형(van-type) 자동차·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특정한 픽업형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을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 (a) 안전장치[예: 안전좌석벨트나 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과 앵커 포인트(anchor point)]가 있는 각각의 승객용 내구성(耐久性) 좌석을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와 앞 쪽 승객용 구역의 후위에 좌석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내구성 앵커 포인트와 용품을 갖추고 있을 것 ; 이러한 좌석은 고정되어 있거나 접어서 이동시키거나 앵커 포인트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의자일 수 있다.
- (b) 뒷좌석 양쪽에 유리창이 존재할 것 ;
- (c) 차 옆이나 뒤에 유리창을 갖춘 미닫이 문, 안쪽으로 열리는 문, 들어 올리는 문이 있을 것 ;
- (d) 운전자와 앞쪽 승객용 구역과 승객과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는 뒷좌석 사이에 영구적인 패널(panel)이나 벽이 존재할 것 ;
- (e) 자동차 실내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내부마감·용품 등(예: 바닥 카펫·환풍구·내부조명·재떨이)이 있을 것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새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가속·제동·정지·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

위에서 기술한 특성을 지닌 삼륜자동차는 그것이 물품의 운송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제87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자동차는 차륜식이나 무한궤도식의 것이 있다.

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동기를 결합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기계적 추진 목적으로, 이들 자동차는 소모성 연료와 전기 에너지/전력 저장 장치[예: 축전지(electric accumulator), 축전기(capacitor), 플라이휠/발전기] 모두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파워트레인 구성(예: 병렬 하이브리드, 직렬 하이브리드, 동력분기나 직렬-병렬 하이브리드)과 하이브리드화의 정도(즉, 완전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 전력 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 충전소에 플러그를 꽂아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축전지 팩에 의하여 동력을 얻는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그러나, 추진이 아닌 기능에만 사용되는 전력원(예: 교류발전기/시동기)을 갖춘 자동차는 HEV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러한 전력원은 스탑-스타트 시스템(stop-start system)을 구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회생 제동 및 충전 관리 시스템(regenerative braking and charge management system)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기술(hybrid technology)” 또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micro hybrid)”고 부를 수 있지만, 추진용 전기모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놀이공원의 탈것이나 유원지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차량[예: “범퍼카(dodge'em car)"]은 **제9508호**로 분류한다.

87.04 - 화물자동차(+)

-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704.4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8704.4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8704.4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704.5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8704.5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8704.60 -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704.90 - 기타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無蓋車 : open wagon) · 방수포를 덮어씌운 것 · 유개차(有蓋車 : covered wagon) 등] ; 여러 가지 배달 자동차와 이삿짐 운반차 ; 자동 양하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트럭)[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y)나 트럭 등] ; 탱커(tanker) (펌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냉장화물자동차(트럭)나 단열차[insulated lorry(truck)] ; 산(酸)을 넣은 유리병과 부탄을 넣은 실린더 등을 수송시키기 위한 다층의 상으로 된 화물자동차(트럭) ; 탱크 · 리프팅(lifting) · 굴착기계 · 전력용의 대형 변압기 등의 운반용으로서 적하할 때 경사가 되도록 상을 내리는 기계를 갖춘 거대화물수송용의 자동차(트럭) ;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수송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물자동차(트럭)(제8705호의 콘크리트믹서 차량은 제외한다) ; 폐품 회수차[권양(捲揚 : lifting) · 압축 · 댐핑(damping) 등 장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 · 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새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 · 가속 · 제동 · 정지 · 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

위에서 기술한 특성을 지닌 삼륜자동차는 그것이 사람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제8703호**에 분류한다.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의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데,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 운송에 사용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는 후면에 안전좌석벨트, 앵커 포인트(anchor point), 승객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벤치 형(型: bench-type)의 좌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좌석은 화물 운송할 때 후위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면에 바싹 붙여 집을 수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multipurpose)” 자동차[예: 밴형(van-type) 자동차·픽업형자동차·특정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을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 (a) 운전자와 앞쪽 승객 구역의 후위에 안전장비[예: 안전좌석벨트·앵커 포인트(anchor point)·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나 승객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벤치 형(型: bench-type)의 좌석이 있을 것. 이 좌석은 보통 접어서 이동시키거나 접이식 의자여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있어 후위바닥[밴형(van-type) 자동차]이나 독립된 플랫폼(픽업 자동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
- (b) 독립된 운전자와 승객용 객실이 있으며 양 옆 벽면과 아래로 짓혀지는 후문을 갖춘 독립된 열린 플랫폼이 있을 것[픽업 자동차(pick-up)] ;
- (c) 양 옆면에 뒷 유리창이 없을 것 ; 화물을 상하차 하기 위하여 후미에나 옆면에 유리창이 없는 미닫이 문·안쪽으로 열리는 문·들어 올리는 문이 있을 것[밴형(van-type) 자동차] ;
- (d) 운전자와 앞쪽 승객용 구역과 후면구역 사이에 영구적인 패널(panel)이나 벽(barrier)이 없을 것 ;
- (e) 화물적재 구역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내부마감·용품 등(예: 바닥 카펫·환풍구·내부조명·재떨이)이 없을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 (1) **덤퍼(dumper)** : 굴착된 토양이나 그 밖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경사식(傾斜式: tipping)의 차대, 저변 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부정지주행용의 차륜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연한 지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량(重量)이나 경량(輕量)의 덤퍼를 모두 포함한다. 후자는 때때로 전후겸용의 좌석·반대방향을 향한 두 개의 좌석이나 두 개의 조종 핸들을 갖추고 운전자가 양하되는 차대를 보면서 해당 차량을 조업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도 있다.
- (2) **셔틀카(shuttle car)** : 이러한 차량은 광산에서 석탄이나 광석을 굴광기(hewing machinery)에서 컨베이어벨트로 운반시키는데 사용한다. 중량(重量)이며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고 내연기관이나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중심이 낮은 차량이며 ; 차량의 상(floor)을 형성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하여 자동으로 양하한다.
- (3) **자동적재식 화물자동차(self-loading vehicle)** : 윈치·승강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나, 본래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 (4)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는 화물자동차(road-rail lorry)(트럭)** : 특히 도로와 궤도 위를 주행하도록 장비를 갖춘 것이다. 이들 차량은 그 바퀴가 궤도 위에 놓여 있는데, 차량의 앞과 뒤에 보기(bogie)식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 보기(bogie)식 장치를 잭(jack)으로 들어 올리면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엔진과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 채시(chassis)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장형의(long) 화물이나 컨테이너의 취급에 사용하는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제8426호)
- (b) 광산용 로더-트랜스포터(loader-transporter)(제8429호)
- (c) 배달용 모터사이클, 삼륜차 등과 같은 화물수송 능력을 갖춘 모터사이클·모터스쿠터와 모터를 갖춘 차전거(이 호의 삼륜자동차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711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704.10호

이들 덤퍼(dumper)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하여 화물수송용의 그 밖의 차량[특히 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y)(트럭)]과 구별할 수 있다.

- 덤퍼(dumper) 몸체는 매우 강력한 강판(steel sheet)으로 만들어지고 ; 그 앞부분은 운전석을 보호하도록 운전석 위로 뻗쳐 나와 있으며 ; 바닥의 전부나 일부가 뒤를 향하여 위로 경사져 있다.
-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이 단지 반쪽만이 있는 것도 있다.
- 차축 현가장치(axle suspension)가 없다.
-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는다.
-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 특수 정지용(整地用 : earth-moving) 타이어를 갖고 있다.
- 견고한 구조 때문에 차체 중량과 하중비율이 1 : 1.6을 초과하지 않는다.
- 차체는 재료가 달라붙거나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가스로 가열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덤퍼(dumper)는 광산이나 터널 공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예: 바닥이 열리는 형태의 차체를 갖춘 것). 이러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특성을 갖지만, 그러나 운전석이나 차체의 운전석 위로 뻗쳐 나온 보호용인 전면부분이 없다.

소호 제8704.21호 · 제8704.22호 · 제8704.23호 · 제8704.31호와 제8704.32호

총중량(g.v.w. : gross vehicle weight)은 차량의 최대설계 중량으로서 제조자가 명기해 놓은 노상중량(road weight)이다. 이 중량은 차량·최대표시적재량·운전자·연료를 가득 채운 탱크의 합계중량이다.

87.05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 (breakdown lorry) · 기중기차(crane lorry)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8705.10 - 기중기차(crane lorry)

8705.2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8705.30 - 소방차

8705.4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705.90 - 기타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1) 자동차(트럭) 채시(chassis)로 구성되는 모터부의 구난차(breakdown lorry)(트럭) : 바닥(floor)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비회전 크레인 · 구각(trestle) · 풀리(pulley) · 윈치(winch)와 같은 리프팅기어(lifting gear)를 갖춘 것과 고장 난 차량을 인양하고 예인(曳引)하기 위하여 설계 · 제작된 것
- (2) 모터펌프(motor pump)차 : 보통 자동차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되는 펌프를 갖춘 것(예: 소방차)
- (3) 가선 · 가로등 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다리나 승강대를 갖춘 차량(트럭) ; 영화나 텔레비전 촬영용의 플랫폼과 조절용 암[“돌리(dolly)”]을 갖춘 차량(트럭)
- (4) 도로 · 하수 · 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 · 살수차 · 살수청소차 · 정화조용 청소차)
- (5) 제설기를 **내장한** 제설차 ; 즉, 이 차량은 제설 **전용**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통 터빈 · 회전 날개깃 등을 갖추고 차량 자체의 엔진이나 별개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호환성 제설기의 장비는 모든 경우에 **제외하며(제8430호)** 차량에 장착되어 제시하는지에 상관없다.
- (6) 가열장비의 장착여부에 상관없이 타르나 자갈의 살포용 · 농업용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살포차(트럭)
- (7) 기중기차(crane lorry)(트럭) :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며,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채시(chassis)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자동적재 장치를 갖춘 차(트럭)는 **제외한다(제8704호)**.
- (8)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즉, 시추용 등에 사용하는 데릭(derrick) · 윈치(winch)나 그 밖의 기기를 갖춘 차량(트럭)]

- (9) 적재기를 갖춘 차량(트럭)(즉,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는 하대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한다) : 다만, 이 호에는 윈치(winch)·엘리베이터 장치 등을 갖춘 자동적재 차량으로서, 원래부터 화물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제8704호)**.
- (1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트럭) : 운전대와 자동차 새시(chassis)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믹서가 고정 장착되어 있어서 콘크리트의 혼합이나 운반의 두 가지 용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11) 이동 발전설비차 : 즉, 자동차의 엔진이나 별개의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가 장착된 차량(트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2) 이동 방사선차 : 예를 들면, 검사실·암실·완전한 방사선 장치가 갖추어진 것
- (13) 이동 진료차[내과용이나 치과용] : 수술실·마취장치와 그 밖의 의료설비를 갖춘 차량
- (14) 조명차(searchlight lorry)(트럭) : 즉, 차량에 서치라이트(searchlight)가 장치된 것으로서 보통 자동차의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에 의하여 전류를 공급시키는 것
- (15) 옥외 방송차
- (16) 전신·무선전신·무선전화의 송신기와 수신기차 ; 레이더 차
- (17) 경마장에서 승부와 우열의 차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계산 기구를 갖춘 “토테(Tote)”차
- (18) 이동 검사차(예: 농업기계의 성능을 검사하는 것)
- (19) 차량의 견인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록장치가 부착된 검정차(트럭)
- (20) 충분한 설비가 된, 즉, 반죽하는 것·오븐 등을 갖춘 이동식 제빵차 ; 야외 주방차
- (21) 여러 가지 기계·공구·용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공작차(workshop van)
- (22) 이동은행·순회도서관·상품전시용의 쇼룸(showroom)차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자주식(自走式)의 로드 롤러(road roller)(**제8429호**)
- (b) 농업용 롤러(roller)(**제8432호**)
- (c) 보조 엔진이 부착된 소형의 이동식 보행 조종장치(예: 정원·공원 등 청소기와 도로의 교통선 표시기기)(**제8479호**)
- (d) 모터-홈(motor-home)(**제8703호**)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새시(chassis)나 새시(chassis) 로리(트럭)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지균기(地均機)·굴착기·천공기(穿孔機)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엔진·기어 체인지용의 기어박스과 제어장치·조종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새시(chassis)나 로리(lorry)(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주식(自走式) 기계(예: 크레인·굴착기) 중 차륜식이나 무한궤도식의 새시(chassis)에 장비된 작업 기계의 운전실 내에 앞에서 설명한 주행용이나 중앙조종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해당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가에 상관없이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새시(chassis)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어 있고, 일체 구조의 기계장치 [예: 자주식(自走式)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로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自走式) 기계를 **제외한다**. 이 경우에 기계는 단순히 **자동차용 새시(chassis)**에 장비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새시와 완전히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기재된 기본적인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것도 있다.

자주식(自走式)의 제설차(self-propelled snow-plough or snow-blower)로서 이러한 장치가 내장(built-in)되어 있는 것은 항상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소호해설]

소호 제8705.10호

제8705호 (7)항 해설을 참조할 것

87.06 -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열거된 자동차용의 것으로 엔진·트랜스미션(transmission)·조향기어(操向: steering gear)·차축(차륜의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장착된 새시(chassis)프레임이나 새시(chassis)-차체(단일 차체나 모노코크 구조)의 결합체를 포함한다. 말하자면 이 호에는 차체가 없는 자동차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하는 새시(chassis)에는 보닛(bonnet)(후드)·윈드스크린(windscreen)(윈드쉴드)·진흙 받이·발판·계기반(계기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새시(chassis)는 타이어·기화기(carburettor)·배터리나 그 밖의 전기기기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완전(complete)하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한(substantially complete) 트랙터나 그 밖의 차량이라면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호에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엔진과 운전실을 갖춘 새시(chassis) : 운전실이 완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시트(seat)가 없는 것]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 (b) 엔진을 갖추지 않은 새시(chassis) : 여러 가지 기계적 부분품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제8708호**).

87.07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 제8703호의 차량용

8707.90 - 기타

이 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열거된 자동차용 차체[운전실(cab)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새시(chassis)에 장착시키도록 설계된 차체뿐만 아니라 새시가 없는 차량의 차체도 분류하며 [이 경우에는 차체 그 자체가 엔진과 차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새시의 특정 요소가 차체에 결합되어 일체구조로 된 차체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광범위한 여러 가지 차량용 차체를 포함한다[예: 승용차·화물자동차(트럭)·특수용도차].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철강·경(輕)금속합금·목재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에는 계기반·짐 넣는 부트(트렁크)·시트(seat)와 쿠션·매트·하물 선반·전기부속기기 등의 부속기기와 부속품이 완비되어 있는 것도 있다.

불완전한(incomplete) 차체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윈드스크린(windscreen)이나 문(門)과 같은 부분품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실내장식품이나 페인트 도장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는 것 등이다.

운전실[예: 화물자동차(트럭)과 트랙터용의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87.08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 8708.1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 8708.21 -- 안전벨트
- 8708.22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 8708.29 -- 기타
- 8708.3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8708.40 -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 8708.7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8708.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 8708.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8708.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8708.99 -- 기타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조립된 자동차용 새시 프레임(chassis-frame)(차륜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엔진을 갖추지 않은 것**)과 그 부분품[사이드멤버(side-member)·브레이스(brace)·크로스멤버(cross-member) ;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 ;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支持具)와 브래킷(bracket)]

-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진흙받이 ; 대시보드(dashboard)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 ; 조종 브래킷(bracket) ; 외부하물선반 ; 챙(visor) ; 비전기식가열기과 제상기(除霜機 : defroster appliance)(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 조립품[채시(chassis)와 차체를 일체구조로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완전한(incomplete)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것**, 예: 도어·진흙받이·보닛(bonnet)(후드)·뒷부분 커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8707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 (C) 클러치[원추 모양·플레이트(plate)모양·유압식의 것·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식 클러치를 **제외한다**]·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plate)와 레버·틀을 붙인 라이닝(lining)
-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오버드라이브(overdrive)·자동변속장치(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gear pinion)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 등
-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 [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
-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하프샤프트 ; 기어·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 다만,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 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하는 연결봉·압봉·밸브리프터(valvelifter)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캠샤프트(cam shaft)·플라이휠(flywheel)을 **제외한다**.
-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 튜브(steering column tube)·스티어링 트랙봉(steering track rod)·레버·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 케이싱(casing) ; 랙(rack)·피니언(pinion) ; 서보조종기구(servo-steering mechanism)]
- (H) 브레이크[슈(shoe)·세그먼트(segment)·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드럼·실린더·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 브레이크(servo-brake)와 이들의 부분품
- (I)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마찰식·유압식 등)·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토션 바(torsion bar)
- (K) 차륜[철강제의 디스크(disc)형의 것·와이어 스포크(wire-spoked)형의 것 등](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 무한레도 차량용의 트랙과 차륜 세트 ; 림(rim)·디스크(disc)·허브-캡(hub-cap)·스포크(spoke)
-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 박스(steering box)·핸들의 축 ;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클러치 페달 ; 브레이크용의 연결봉·클러치
- (M) 방열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
- (N) 신축성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있는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액셀러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고 고정하는 끝부분에 부착구가 있다.

- (O) 팽창 시스템(inflator systems)을 갖춘 모든 형식의 안전 에어백(safety airbags)(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그 밖의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와 그 부분품. 팽창 시스템은 가스 주입을 지시하는 점화기(觸發機 : igniter)와 용기에 들어 있는 팽창 가스로 구성한다. 이 호는 원거리 센서(remote sensor)나 전자 제어기(electronic controller)는 **제외한다**. 이들은 팽창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 호에는 **제8412호**의 유압식이나 공기작동식의 실린더는 **분류하지 않는다**.

**87.09 -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
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 차량

8709.11 -- 전기식의 것

8709.19 -- 기타

8709.90 - 부분품

이 호에는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여러 가지 화물(물품이나 컨테이너)의 단거리 운반이나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소형 트레일러의 견인에 사용하는 형식의 자주식(自走式) 차량을 포함한다.

이러한 차량에는 여러 가지의 형식과 크기의 것이 있다. 이들 차량은 축전지에 의하여 전류가 공급되는 전동기나 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한다.

일반적으로 제8701호·제8703호·제8704호와 구별하는 이 호의 차량에 공통하는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그 구조와 일반적으로 그 특수한 설계상의 특징이 도로나 그 밖의 공공도로에서 여객의 수송이나 물품의 수송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다.
- (2)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그 최고 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km~35km 이하이다.
- (3) 그 선회반경(旋回半徑 : turning radius)은 대체로 해당 차량의 길이와 동등하다.

이 호의 차량은 보통 문을 단 운전실(cab)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공간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수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플랫폼 정도인 경우도 있다. 특정형의 것은 운전석 위에 급속제 망 등의 보호용 프레임(frame)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의 차량은 보행하면서 조종될 경우도 있다.

작업트럭(work truck)은 예를 들면, 그 뒤에 화물이 적재되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나 컨테이너(때로는 승강하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를 부착한 화물 운송용의 자주식(自走式) 트럭이다.

일반적으로 철도역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소형 탱크트럭도 보조펌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 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tractor)**는 본래 다른 차량, 예를 들면, 소형 트레일러와 같은 차량을 끌거나 밀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자체가 화물을 운반하지는 못하며, 일반적으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비하여 경량(輕量)이고 마력도 작다. 이러한 형의 트랙터는 부두·창고 등에서도 사용한다.

부분품

이 호에 분류하는 차량의 부분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i)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샴시(chassis)
- (2) 차체 · 플랫폼 · 분리식 축관 · 경사식(傾斜式 : tipping) 차량
- (3) 차륜(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 (4) 클러치
- (5) 차동기어박스(변속장치)
- (6) 차축
- (7) 스티어링휠(steering wheel)이나 스티어링바(steering bar)
- (8)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9) 신축성이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된 클러치 케이블 · 브레이크 케이블 · 액셀러이터 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고 끝부분에 부착구를 장착한 상태로 제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기중기를 부착한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와 작업트럭(**제8426호**)
- (b) 권양(捲揚)이나 취급용 장치를 부착한 포크리프트(fork-lift) 트럭과 그 밖의 작업트럭(**제8427호**)
- (c) 덤퍼(dumper)(**제8704호**)

87.1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 : motorised)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분류한다.

전차(tank)는 무한궤도식의 장갑차량으로서 보통 하나의 회전식 포탑에 내장된 여러 가지 무기(포·기관총·화염발사기 등)로 무장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때때로 차량의 동요에 관계없이 목표물의 겨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특수한 자이로스코프식(gyroscopic)의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것에도 “플레일(flail)”[전차의 전면에 있는 암(arm)에 받혀져 있는 회전드럼으로서 강구부(ball end)의 체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나 전차의 전면에 부착된 많은 무거운 롤러(rollers)와 같은 대지회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수륙양용전차(amphibious tank)도 포함한다.

장갑차(armoured car)는 전차(tanks)보다 빠르고 가벼우며 전차와 같은 무거운 장갑을 할 수 없거나 대형포를 장비시킬 수도 없다. 흔히 부분적으로 장갑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갑차는 주로 전투지역에서 치안·경찰·수송용으로 사용한다. 어떤 장갑차는 무한궤도식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것은 차륜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수륙양용의 것일 수도 있다(예: 무한궤도식의 상륙용 장갑차량).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 (A) 전투용 차량의 수리용 크레인이 장착된 전차
- (B) 장갑된 보급용 차량(일반적으로 무한궤도식의 것이며 무장시키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 없다) ; 이러한 것은 전투지역에서 석유·탄약 등의 수송용으로 사용한다.
- (C) 전선의 전투차량이나 대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원격조종식의 소형 “전차”
- (D) 특수한 파괴 장치가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장갑 차량
- (E) 병사수송 장갑차

이 호에는 약간의 장갑이나 보조적인 이동식 장갑을 갖춘 재래식의 승용차와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제8702호부터 제8705호까지).

자주식(自走式 : self-propelled) 포병 무기는 **제9301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은 정지시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포신의 선회(旋回 : traverse)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부분품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도 분류한다.

- (i)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장갑차의 차체(body)와 그 부분품[포탑·장갑된 도어·보닛(bonnet) 등]
- (2) 전차용으로 특히 제작된 무한궤도
- (3) 장갑차용의 특수차륜
- (4) 전차용 무한궤도의 구동용 차륜
- (5)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이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정도까지 가공된 장갑판
- (6) 신축성이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된 클러치 케이블·브레이크 케이블·액셀러이터 케이블과 이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고 끝부분에 부착구를 장착한 상태로 제시한다.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711.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711.60 -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 8711.90 - 기타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motor-scooter) ; 내장된(built-in) 엔진과 페달 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포장도로(인도)·골목길·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저속운행 영역에서 운행할 용도의 일인용 전기동력 이륜 수송 장비를 포함한다. 이 장비에 적용된 기술은 운전자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데, 운전하는 동안 자이로스코프(gyroscope) 센서와 다중 온보드 마이크로프로세서(multiple onboard microprocessor)로 구성된 시스템은 좌우로 배열되어 각기 따로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위에서 장비와 운전자가 모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준다. 이 호의 모터사이클은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데, 이들은 “전기 모터사이클(Electric Motorcycle)”이라고 한다. 이 모터사이클은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축전지 팩을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플러그-인(plug-in)” 방식 모터사이클의 축전지는 전력 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 충전소에 플러그를 꽂아 재충전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에는 풍우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었거나 사이드카(side-car)가 부착된 것도 있다.

삼륜자동차[예: “배달용 삼륜차(delivery tricycle)”형]도 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제8703호나 제8704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사이드카(side-car), 즉,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차량으로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사이드카는 한쪽 옆에는 한 개의 차륜을 갖추고 다른 쪽에는 사이클이나 모터사이클에 사이드카를 부착시키고 사이클이나 모터사이클과 나란히 주행시키기 위한 연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튜브샴시(tube chassis)를 장착하고, 모터카 형태의 조향(操向 : steering)시스템[예: 액커만(Ackerman) 원리에 근거한 조향(操向 : steering)시스템]을 가진 사람 수송용의 사륜 자동차(**제8703호**)
- (b) 사이클이나 모터사이클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트레일러(**제8716호**)

87.12 -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치 않은 사이클, 즉 하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한다[예: 이륜자전거(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한다)·삼륜자전거·사륜자전거].

이 호에는 보통의 자전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수형식의 것도 포함한다.

- (1) 배달용 삼륜자전거 : 보통 두 개의 차륜 위에 제작된 용기(때때로 절연된 것)의 부분과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 일체로 되어 있다.
- (2) 2인승 자전거
- (3) 곡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륜차(외바퀴 자전거)와 이륜자전거로서, 그 특징은 경량(輕量)· 고정식 차륜 등이다.
- (4) 신체장애인으로 특별히 제작된 자전거(예: 한발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특수한 부착물을 갖춘 자전거)
- (5) 뒷바퀴의 허브(hub)에 평형용 보조차륜을 부착한 이륜자전거
- (6) 경주용 자전거
- (7) 수개의 좌석과 수개 조의 페달을 갖춘 경량(輕量) 구조의 사륜식 자전거
- (8) 페달로 추진되는 자전거형 스쿠터 : 어린이·청소년·성인이 탈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향(操向 : steering) 기둥과 핸들·팽창식 바퀴·프레임(frame)과 핸드 브레이크·체인과 스프로킷(sprocket) 장치에 부착된 단일 페달을 갖추고 있다.

이 호의 자전거에 사이드카(side-car)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사이드카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제8711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보조 모터를 갖춘 자전거(**제8711호**)
- (b) 어린이용 자전거(어린이용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제9503호)**)
- (c) 유원지용으로만 적합한 특수 자전거(**제9508호**)

87.13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8713.90 - 기타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한다.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보통 경량(輕量) 엔진으로 구동되거나 레버나 핸들조작기구에 의해 손으로 구동한다. 그 밖의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직접 손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구동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조된(adapted)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치·액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제8703호**)나 특수한 부착물이 갖추어졌거나 한발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륜자전거(**제8712호**])
- (b) 트롤리 들것(trolley-stretcher)(**제9402호**)

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8714.20 - 신체장애이용 차량의 것

- 기타

8714.91 --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714.92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8714.93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휠(sprocket-wheel)

8714.94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8714.95 -- 안장

8714.96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8714.99 -- 기타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사이드카(side-car)·모터를 달지 않은 사이클·신체장애이용 차량에 사용하는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배달용 삼륜자전거용·사이드카(side-car)용·신체장애이용 차량의 차체(body)와 그 부분품 [후드·도어·상(floor) 등]
- (2) 새시(chassis)와 프레임(frame)과 이들의 부분품
- (3) 기어링(gearing)·기어박스·클러치(clutch)·그 밖의 변속장치와 그 부분품[모터사이클(motorcycle)용에 한한다]
- (4) 휠과 그 부분품[허브(hub)·림(rim)·스포크(spoke) 등]
- (5) 프리휠 스프로킷휠(free-wheel sprocket-wheel)
- (6) 변속장치(derailleur)와 그 밖의 기어기계장치와 그 부분품
- (7) 크랭크기어(crank-gear)와 그 부분품[크랭크-휠(crank-wheel)·크랭크(crank)·축 등]·페달과 그 부분품(축 등) ; 토우클립(toe-clip)
- (8) 시동대(kickstarter)·레버와 그 밖의 조종 기어

- (9) 여러 가지의 브레이크[캔틸레버(cantilever)브레이크 · 캘리퍼(caliper)브레이크 · 드럼(drum) 브레이크 · 허브(hub)브레이크 · 디스크(disc)브레이크 · 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eaking hub) 등]와 이들의 부분품[허브브레이크(hub brake)용 레버 · 블록홀더레버 · 드럼과 슈, 캔틸레버 브레이크용 요크(yoke)]
- (10) 핸들 축 · 핸들 축 연결봉 · 핸들 축잡이(코르크제 · 플라스틱제 등)
- (11) 새들(saddle)(좌석) · 새들 지주(좌석 지주) ; 새들(saddle) 커버
- (12) 차륜용 포크[신축식 차륜포크(telescopic fork)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포크 크라운(fork crown)과 블레이드(blade) 등]
- (13) 자전거의 차체용 튜브(tube)와 러그(lug)
- (14) 유압식 쇼크업소버(shock-absorber)와 그 부분품
- (15) 흡받기와 그 지지구(支持具)(흡받기 받치는 것 · 잠금용 봉 등)
- (16) 반사경(부착되어 있는 것)
- (17) 포장덮개(제5608호의 망을 제외한다) ; 변속기체인 덮개 ; 발이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판과 다리 보호대
- (18) 모터사이클용 스탠드
- (19) 스쿠터용의 경사식(傾斜式) 카울(tilting cowl)과 스페어휠(spare-wheel) 커버
- (20) 소음기(머플러)와 이들의 부분품
- (21) 연료탱크
- (22) 윈드스크린(windscreen)[윈드쉴드(windshield)]
- (23) 하물대(luggage rack) ; 전등대(lamp bracket) ; 수조대(water-bottle bracket)
- (24) 신체장애이용 차량의 구동용 레버와 크랭크핸들 · 등받이와 등받이 조정대 · 발이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판 · 다리 지지대(leg-support) · 팔걸이(armrest) 등
- (25) 신축성이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된 클러치 케이블 · 브레이크 케이블 · 액셀러이터 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 되고 끝부분에 부착구를 장착한 상태로 제시한다.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 **유모차(baby carriage)** : 접이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이다[푸쉬체어(push-chair)·퍼램블레이터(perambulator)·스트롤러(stroller) 등].

(II)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i) 이 호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새시(chassis)에 장착된 차체[크레이들(cradle)로 사용할 수 있는 유모차용의 탈착식 차체를 포함한다]
- (2) 새시(chassis)와 그 부분품
- (3) 차륜(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 8716.1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 8716.2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8716.31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 8716.39 -- 기타
- 8716.4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8716.80 - 그 밖의 차량
- 8716.90 - 부분품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륜을 갖추지 않은 비기계식의 차량[예: 썰매·목재 궤도 위를 주행하는 특수한 썰매(sled) 등]도 포함한다.

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화물자동차·트럭·모터사이클·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트레일러(trailer)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이 호에 있어서 “트레일러(trailer)”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란 특수한 연결 장치(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진적으로 다른 차량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종류의 차량[사이드카(side-car)를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가장 중요한 형의 것은 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트레일러는 보통 둘 이상의 차륜세트를 가지며 트레일러 조종용의 선회(旋回: swivelling)식 차륜에 부착된 연결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세미트레일러는 뒷바퀴만이 붙어 있고, 그 앞쪽 끝 부분에 특수 연결 장치에 의하여 연결되는 견인차의 연결대 위에 걸려 있다.

다음의 해설에 있어서 “트레일러(trailer)”라는 용어에는 세미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트레일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주거용이나 캠핑용의 이동 주택형 트레일러(여행용 트레일러)
- (2) 농업용 자동적재 트레일러 : 자동적재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목초·옥수수대 등의 절단기기를 부착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수확장비가 고정 장착되어 있어서 풀·옥수수 등을 절단하고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자동적재 트레일러는 **해당되지 않는다(제8433호)**.

- (3) 자동 양하(揚荷) 트레일러 : 건초·퇴비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며, 양하용의 움직이는 바닥(moving floor)을 갖춘 것 ; 이들 트레일러는 퇴비절단기·마초분쇄기 등 여러 기기를 부착할 수 있어서 퇴비 살포기·건초용 박스나 뿌리용 트레일러(root trailer) 등의 용도에 응용된다.
- (4) 물품수송용의 그 밖의 트레일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펌프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 (b) 농업용·토목공사용 등의 트레일러[경사식(傾斜式)인지에 상관없다]
 - (c)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의 냉장식이나 단열식 트레일러
 - (d) 이삿짐용 트레일러
 - (e) 가축·자동차·자전거 등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
 - (f) 특정 물품의 운송용으로 개조된 트레일러(예: 판유리용)
 - (g) “로드레일(road-rail)”[복합운송(intermodal)] 트레일러(가이드 레일을 갖춘 특수한 철도 차량에 의하여 수송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주로 도로용 트레일러로 사용하는 것)
 - (h) 철도차량의 도로상 수송용으로 레일을 갖춘 트레일러
 - (ij) 중량물(탱크·크레인·불도저·변압기 등) 수송용의 적재용 경사판을 갖춘 저상식(低床式) 트레일러
 - (k) 이륜식이나 사륜식의 목재운반용 독립현가식 보기(bogie)차
 - (l) 목재운반용의 벌목 트레일러
 - (m) 사이클이나 모터사이클에 의하여 견인되는 소형 트레일러
- (5) 다음과 같은 그 밖의 트레일러
- (a) 여객 수송용으로 특히 설계된 자동차용 트레일러
 - (b) 유원지용 캐리밴(caravan)이나 트레일러[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되고 그 일부를 형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제9508호)]
 - (c) 전시용 트레일러
 - (d) 도서관용 트레일러

(B)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 차량(hand-or foot-propelled vehicle)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트럭과 트롤리(예: 방직용·요업용·낙농용 등)

- (2) 외바퀴차 · 수화물용 트럭(luggage truck) · 홉퍼트럭(hopper-truck) · 경사차(tipping truck)
- (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음식물용 카트 · 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 (4) 손수레(예: 쓰레기처리용)
- (5) 인력거
- (6)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손수레
- (7) 행상인용의 여러 가지 손수레 : 이러한 경량(輕量)의 차에는 때때로 공기식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다.
- (8) 산이 많은 지역에서 목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썰매(손으로 끄는 것)
- (9) 땅위에 덮인 눈 위에서 승객의 발에 의한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킥슬레드(kicksled)” : 특히 아(亞)북극지대(subarctic region)에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 (a)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제3924호나 제7323호)
- (b)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 알려진 보행 보조기[일반적으로 세 개나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나 전부는 선회(旋回)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管) 형태의 금속 프레임(frame), 핸들과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제9021호)
- (c) 상점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바구니 세공물이나 금속 등으로 된 소형의 차륜부 컨테이너(예: 차륜부 바스켓)[새시(chassis)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동물이 끄는 차량(vehicle drawn by animal)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국영(예식용) 마차[state (ceremonial)-coach] · 쿠페(coupé) · 칼라쉬(calash) · 옛날식 전세마차(hackney-coach) · 카리브올레(cabriolet)
- (2) 영구차(hearse)
- (3) 일인승 이륜차(sulky)
- (4) 공원 · 유원지 등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의 당나귀나 조랑말(pony)이 끄는 마차
- (5) 여러 가지의 배달용 차량 ; 이삿짐 운반차
- (6) 여러 가지의 카트[경사식(傾斜式) 카트를 포함한다]
- (7) 썰매와 슬레이(sleigh)

기계 등이 부착된 차량(vehicles fitted with machinery)

차량 위에 기계나 장치가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의 분류는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차량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에 반하여 그 본질적인 특성이 차량에 결합한 기계나 장치에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위에 설명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 (I) 그 위에 탱크를 부착한 트럭·카트·트레일러는 주입용이나 배출용의 보조 펌프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한다.
- (II) 예를 들면,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그 기계나 장치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한다.
 - (a) **제8424호**의 손으로 미는 식의 트럭, 동물용 카트, 트레일러 형태의 분무장치
 - (b) 이동식 펌프와 이동식 압축기(**제8413호**나 **제8414호**)와 같은 간단한 일륜식의 채시(chassis)에 장착된 기계나 장치로서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과 이동식의 크레인과 사다리(**제8426호**나 **제8428호**)
 - (c) 피견인식 콘크리트 믹서(**제8474호**)

부분품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을 포함한다.

- (i)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채시(chassis)와 구성 부분품[프레임 사이드 멤버(frame side member)·크로스 멤버(cross member)]
- (2) 차축
- (3) 차체(body)와 그 부분품
- (4) 목재나 철강으로 만든 차륜과 그 부분품(타이어가 부착된 차륜을 포함한다)
- (5) 연결장치(coupling device)
- (6)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7) 샤프트·스윙글-바(swing-bar)와 이와 유사한 부분품

*
* *

터보건(toboggan)·봅슬레이(bobsleigh)[봅슬레드(bobsled)] 등의 겨울철 스포츠용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506호)**.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



소호주:

1. 소호 제8802.11호부터 제8802.40호까지에서 "자체 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의 기체(機體) 중량을 말한다 [승무원·연료·장비(영구 장착된 장비는 제외한다)의 중량은 제외한다].
2. 소호 제8806.21호부터 제8806.24호까지와 제8806.91호부터 제8806.94호까지에서 "최대이륙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할 때의 기체(機體)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화물·장비·연료의 중량을 포함한다).

총설

이 류에는 기구와 비행선과 무동력 항공기(제8801호), 그 밖의 항공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제8802호), 낙하산과 같은 관련기기(제8804호),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와 지상비행 훈련장치(제8805호)를 분류한다. 또한 제17부의 주 규정 **에 따라** (제17부 총설 참조)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미완성(unfinished)의 항공기(예: 엔진이나 내부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항공기)는 그것이 항공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갖춘 것이면** 완전하거나 완성된 항공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88.01 -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I) 기구·비행선(balloons and dirigible)

이 그룹에는 그 의도된 용도(군사용·운동용·과학용·공공용 등)에 상관없이 경(輕)항공기를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비행용과 계류용(繫留用)의 **기구(balloon)**(즉, 케이블에 의하여 지상에 계류한다)와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비행선(dirigible)**으로 구성된다.

이 호에는 항공학이나 기상학에 사용하는 다음 형식의 기구를 포함한다.

- (1) **발신용 기구(sounding balloon)**. 이러한 것은 무선 발신용 기구를 고공으로 운반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중량이 4,500g 이하이나, 보통은 350g과 1,500g 사이의 여러 가지이다.
- (2) **파일럿 기구(pilot balloon)**. 이러한 것은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지시하기 위하여 방출한다. 보통 중량은 50g부터 100g까지이다.
- (3) **실링 기구(ceiling balloon)**. 이러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1)과 (2)의 기구보다 작은 것으로서 그 중량은 보통 4g부터 30g까지이다. 이것은 구름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상학에 사용하는 기구는 매우 얇고 팽창도가 큰 고품질의 고무로 되어 있다. 소아용 완구의 기구(**제9503호**)는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그 품질이 나쁘고 공기관이 짧으며 때때로 그 표면에 광고나 장식이 되어 있다는 면에서 구별된다.

(II) 글라이더·행글라이더(glider and hang glider)

글라이더(glider)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공중에 머무르는 중(重)비행체이다. 그러나 엔진을 부착하도록 설계되었거나 부착된 글라이더는 **제8802호**에 분류한다.

행글라이더(hang glider)는 특별히 1~2인이 멜빵에 매달려 공중 조종을 행할 수 있는 델타형 날개(delta wing)의 것을 포함한다. 이들 날개는 보통 방직용 섬유재료를 보통 관(管)으로 된 금속으로 만든 단단한 구조물에 잡아 당겨 맨 것이며, 중앙에 수평 조종용 바(bar)가 장착되어 있다. 행글라이더의 다른 형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구조와 공기역학적 행동은 델타형 날개의 것과 유사하다.

(III)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other non-powered aircraft)

이 그룹에는 기계 구동식이 아닌 중(重)항공기로서 **연(kite)**을 포함한다. 연은 계류 기구와 같은 방법으로 줄에 의하여 지상에 계류되며, 예를 들면, 기상학용기기의 운반에 사용한다.

장난감으로 명백히 설계된 연(kite)은 **제외한다(제9503호)**.

*
* *

이 호에는 또한 모형(model)을 **제외한다**(정확한 비율로 제작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예를 들면, 실내장식용품(**제4420호·제8306호**)·전시용 전용(**제9023호**)·오락용의 완구나 동작 모형(**제9503호**)에 사용하는 것

88.02 -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 헬리콥터

8802.11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2.12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802.2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802.3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802.40 -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802.6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기계 구동식의 **중(重)항공기(heavier-than-air aircraft)** : 이 그룹에는 **비행기(aeroplane)** (육상비행기·수상비행기·수륙양용기)·**자이로플레인(gyroplane)**[수직축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회전되는 로터(rotor)를 한 개 이상 갖춘 것]·**헬리콥터(helicopter)**[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로터(rotor)를 한 개 이상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군용·여객 또는 화물 운송용·연습용·항공사진용·영농용·구급용·소방용이나 기상학용이나 그 밖의 과학용에 사용하기도 한다.

도로주행 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

- (2) **우주선(spacecraft)** : 이것은 대기권 밖으로 주행할 수 있는 수송 수단이다(예: 통신위성이나 기상위성).
- (3) **우주선 발사체(spacecraft launch vehicle)** : 지구를 선회(旋回)하면서 운반될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인공위성 운반 로켓)이나 지구 이외의 중력권의 영향 하에 진입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우주선 운반 로켓)이다. 이러한 운반 로켓은 동력비행이 끝날 무렵, 운반되는 물체에 7,000m/s를 초과하는 종단 속도를 부여한다.
- (4) **서보비틀 발사체(suborbital launch vehicle)** : 포물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일반적으로 과학적 목적이나 그 밖의 기술적 목적을 위한 기기(운반되는 물체가 회수 가능한 형태인지에 상관없다)를 대기권 밖으로 운반한다. 운반되는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 운반 로켓은 운반되는 물체에 7,000m/s 이하의 종단속도(terminal velocity)를 전달해 준다. 운반되는 물체는 종종 회수되기 위하여 낙하산에 의해 지표로 되돌아온다.

다만, 이 호에서는 운반되는 물체에 7,000m/s 이하의 종단속도를 전달해 주는 포형 로켓·유도미사일[예: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과 전쟁용의 유사한 군수 물자는 **제외한다(제9306호)**. 이들은 전쟁용 군수물자[예: 폭약·자탄(子彈)·화학작용제]를 운반하여 포물선 궤도를 날아간 후 운반되는 물체가 목표물에 충격을 가하도록 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예를 들면, 장식용 모형(예: **제4420호**나 **제8306호**)이나 순수한 실물 설명용의 모형(**제9023호**)(정확한 비율로 제작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b)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무인기(**제8806호**)
- (c) 오락용의 완구나 모형(**제9503호**)
- (d) 놀이공원의 탈것이나 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모델(**제9508호**)

[88.03]

88.04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승무원·군용품·기상관측용 기기·조명탄 등의 강하용으로 사용하는 낙하산을 분류하며 ; 특정 형식의 것은 제트추진식 항공기의 제동용의 테일슈트(tail chute)로 사용한다. 낙하산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이즈의 것이 있으며 견(silk)·인조 섬유·아마(亞麻 : linen)·면(cotton)·종이 등으로 만든 것이 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보통 형식의 낙하산의 상부에는 보통 예삭(rip cord)을 잡아당길 때 열리는 작은 **파일럿 슈트(pilot chute)**가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슈라우드라인(shroud line)**이 달린 **주낙하산(main chute canopy)**이 차례대로 열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코드는 밑부분에 모여져 **멜빵(harness)**에 붙들어 매진 두 개 이상의 **낙하산 펴는 줄(riser)**에 부착되어 있다. 이 멜빵은 버클(buckle)이나 스냅 혹은 부속된 혁대로 되어 강하자가 몸에 붙들어 매는 것이다. 파일럿 슈트, 주낙하산, 슈라우드라인(shroud line)은 예삭(rip cord)에 의하여 개장되는 **용기(container)** 속에 주의 깊게 포장되어 있다.

이 호에는 산기슭·벼랑 끝 위 등지에서 자력으로 출발하도록 설계된 **패러글라이더(paraglider)**를 포함한다. 이는 접을 수 있는 캐노피(canopy)나 슈라우드(shroud)(날개)·기류 속에서 조종하기 위한 코드 슈라우드 라인(cord shroud line)·조종사를 위한 멜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낙하산과 유사하지만 특정 상태 하에서 기류가 부합하면 패러글라이더는 상승 궤도를 따라 올라갈 수 있으므로 공기 역학적 행동에 있어서는 낙하산을 따르지 못한다.

이 호에는 회전날개장치를 갖춘 형식의 **로토슈트(rotochute)**도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상학 연구에 있어 로켓추진식 무선 발신 장치의 하강제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낙하산 펼침용의 용기·멜빵·스프링 프레임(spring frame)과 같은 낙하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며 로토슈트(rotochute)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88.05 -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 8805.1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 8805.21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 8805.29 -- 기타

이 호에는 전혀 다른 세 종류의 물품을 분류한다.

(A) 항공기 발진장치(aircraft launching gear)

항공기 발진장치는 일반적으로 배 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항공기가 발진되도록 유도하는 금속제 구성물과 일체로 되어 있다. 발진에 필요한 가속도는 항공기에 장치되어 있는 트롤리(trolley)나 램(ram)에 작용되는 압축공기·증기·폭발용 화약 등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글라이더 발사용으로 사용하는 모터 구동식의 윈치기어(winch gear)(제8425호)
- (b) 로켓을 추진시키지 않고 로켓이 발진되는 사이에 단순히 안내만을 하는 로켓 발사용의 램프(ramp)와 탑(tower)(로켓은 그 자신의 동력으로 상승한다)(제8479호)

(B)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deck-arrestor or similar gear)

이러한 장치는 착륙할 때 항공기의 속도를 감소시켜 항공기가 정지하는 데에 필요한 활주길이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항공모함과 비행장에서 사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안전장치[예: 망(net)]와 같은 그 밖의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C) 지상비행 훈련장치(ground flying trainer)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이들 장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전자식의 모의비행장치(flight simulator) : 전자장치가 주어진 비행조건에 상응한 “느낌(feel)”과 계기지시값(reading)의 올바른 조합을 제어기에 입력함으로써 비행 상황을 연출한다. 모의공중전장치(air combat simulator)라는 것은 비행 중의 전투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항공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든 전자적이거나 기계적인 장치를 말한다.
자동차의 새시(chassis)나 트레일러에 부착된 형식의 장치는 각각 제8705호나 제8716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8716호의 해설 참조).
- (2) “링크식 훈련기(link trainer)”로 알려진 이 장치는 지지대 위를 선회(旋回: pivoting)하는 비행기의 조종석과 꼭 같이 제작된 작은 조종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도가 보통 비행에 필요한 모든 조종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분품

-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i) 이러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
* *

다만, 이 호에는 곤란한 비행조건(예: 고가속도·산소의 부족 등)하에 있는 인체반응의 측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치는 **제외하며** ; 즉, 이러한 장치[예: 회전(rotating)축에 장치된 시험실로서 초음속 비행 상태를 모의실험하기 위한 것]는 반응시험장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제9019호**에 분류한다.

조종사의 비행훈련용으로 특히 설계되지 않고 탑승원의 일반 교육용으로 제작된 장치[예: 스케일을 확대하여 제작한 자이로스코프(gyroscope)의 모형]도 **제외한다(제9023호)**.

88.06 - 무인기

8806.10 -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8806.21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8806.22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9 -- 기타

- 기타

8806.91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8806.92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9 - 기타

이 류의 주 제1호에 따라, 이 호에는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무인기(unmanned aircraft)를 분류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무인기는 비행 중에 언제든지 조종사가 다른 장소(예: 지상·배·또다른 항공기나 우주선)에서 원격으로 조종비행이 가능하거나 조종사의 관여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무인기는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보통은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펠러(propeller)나 회전날개(rotor), 고정날개, 그리고 원격 조종사가 지휘와 제어를 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안정적인 회전과 이륙 지점으로의 비행 복귀를 위한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GNSS) 수신기(예: GPS, GLONASS나 BEIDOU)과 장애물 회피·목적물 인식·추적기능용 시스템도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무인기는 화물(payload)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또한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이거나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나 모델로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예를 들면 저(低)중량, 고도제한, 비행 가능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자율비행 기능이 없는 점, 짐/화물 수송 능력이 없는 점, 또는 지능적 전자 장치[예: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야간비행 필요 조건이나 야간 투시성]을 갖추지 않은 점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다(제9503호).

88.07 - 제8801호 · 제8802호 · 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8807.10 - 프로펠러 ·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8807.20 -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

8807.30 - 비행기 · 헬리콥터 · 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8807.90 - 기타

이 호에는 제8801호, 제8802호나 제8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 (i) 이들이 위에 언급된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專用)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그리고
- (ii) 이들이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기구(balloon)와 비행선(dirigible)의 부분품. 예:

- (1) 나셀(nacelle : 기구 밑의 바구니)
- (2) 기낭(envelope)과 그 부분품[스트립(strip)이나 패널(panel)]
- (3) 캐리어 후프(carrier hoop)
- (4) 벨러넷(ballonet)
- (5) 골조(rigid frame)와 그 부분품
- (6) 안정장치(stabiliser)와 조종 장치(rudder)
- (7) 비행선용 프로펠러

(II)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 예:

-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 · 테일 콘(tail cone: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 · 유선형 덮개(fairing) · 패널(panel) · 칸막이 · 화물 넣는 방 · 바닥(floor) · 계기반 · 프레임(frame) · 도어 · 탈출용 낙하장치와 활판(滑瓣) · 창 · 기창(機窓) 등]
- (2) 날개와 이들의 구성부품[날개보(spar) · 리브(rib) · 횡재(橫材)(cross-member)]
- (3) 조종익면(control surfaces)(이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일러론(aileron) · 슬랫(slat) · 스포일러(spoiler) · 플랩(flaps) · 승강타 · 방향타 · 안정판(stabilizer) · 서보탭(servo-tab) 등]

- (4) 엔진실 · 엔진덮개 · 엔진 격납실 · 파일론(pylon)
 - (5) 착륙장치(제동장치와 제동장치 조립품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에 상관없다) ; 착륙용 스키
 - (6) 수상비행기용의 플로트(float)
 - (7) 프로펠러(propeller)[에어스크루(airscrew)] ; 회전날개(rotor) ; 프로펠러용과 회전날개용의 블레이드(blade) ; 프로펠러용과 회전날개용의 피치 조정 기구(pitch control mechanism)
 - (8) 조종용 레버[조종간(操縱杆 : control column) · 방향타 바(rudder-bar)와 그 밖의 여러 가지의 조종용 레버]
 - (9) 연료탱크(보조 연료탱크를 포함한다)
-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주:

1. 선체, 미완성·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분해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완성된 선박(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906호로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선박·보트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선박[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다]과 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buoy) 등의 수상 구조물이 분류한다. 또한 물(바다·하천·호수)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호버크래프트(hovercraft)]은 해안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로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 분류한다(제17부의 주 제5호 참조).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A) 미완성이나 불완전한 선박[예: 추진기·항해용 계기·권양(捲揚)이나 취급기·내부가구 등을 갖추지 않은 것]
- (B)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선체

조립하지 않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선박, 선체, 미완성의 선박이나 불완전한 선박(조립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특정한 선박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선박으로 분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들 물품은 제8906호에 분류한다.

제17부의 그 밖의 류에 분류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이나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표의 다른 해당 호에 분류한다. 예:

- (1) 제17부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부분품과 부속품
- (2) 목제의 노(oar)와 패들(paddle)(**제4421호**)
- (3)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로프와 케이블(**제5607호**)
- (4) 돛(**제6306호**)
- (5) 금속 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mast)·승강구(hatchway)와 트랩(gangway)·난간·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으로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
- (6) 철강으로 만든 케이블(**제7312호**)
- (7) 철강으로 만든 닻(anchor)(**제7316호**)
- (8) 프로펠러와 기선용 외륜(paddle-wheel)(**제8487호**)
- (9) 조타륜(rudder)(**제4421호·제7325호·제7326호** 등)과 선박이나 보트용의 그 밖의 조타 장치(**제8479호**)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장식용의 모형선(예: 대형 범선과 그 밖의 범선)(**제4420호**·**제8306호** 등)
- (b) **제9023호**에 분류하는 전시용의 장치나 모형
- (c) 어뢰(魚雷 : torpedo)·기뢰(機雷 : mine)와 이와 유사한 전쟁용 군수품(**제9306호**)
- (d) 소아가 타도록 설계된 차륜부의 보트형의 완구와 그 밖의 완구(**제9503호**)
- (e) 수상 스키와 이와 유사한 것(**제9506호**)
- (f)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소형 보트(**제9508호**)
- (g)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06호**)

육상과 수상의 특정지역(늘지 등)의 양방을 주행하도록 설계된 수륙양용 자동차와 공기원충식 차량은 **제87류**의 자동차로 분류하고, 수상기와 비행보트는 **제8802호**에 분류한다.

**89.01 -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 · 화물선 · 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 8901.10 -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 8901.20 - 탱커(tanker)
- 8901.30 -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이 호에는 사람과 물품 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며, **제8903호**의 선박과 **제8906호**의 구명보트(노젓는 보트는 제외한다), 군인 수송선 및 병원선을 **제외한다**. 이들은 해상 내륙여행(예: 호수 · 운하 · 강 · 하구)용인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순항선 · 유람선
- (2) 모든 종류의 페리보트(ferry-boats)[트레인 페리(train-ferries) · 카-페리(car-ferries) · 소형의 리버페리(river-ferries) 등을 포함한다]
- (3) 탱커(tanker)(석유 · 메탄 · 포도주 등)
- (4) 고기 · 과일 등의 수송에 사용하는 냉장선
- (5) 모든 종류의 화물선[특수 화물의 수송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탱커(tanker)와 냉장선을 제외한다]. 이러한 것에는 광물운반선과 그 밖의 벌크(bulk) 화물 운반선(예를 들면, 곡물 · 석탄의 수송용)과 컨테이너 운반선, Ro-Ro(roll-on-roll-off)형과 LASH-형의 선박을 포함한다.
- (6) 부선(barge)(종류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거룻배와 부선거(浮船渠 : pontoon)[화물 수송용(때로는 여객도 수송한다)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것]
- (7) 하이드로 글라이더(hydroglider)형 선박 · 수중익선(水中翼船 : hydrofoil) ·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89.02 -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이 호에는 해상이나 내륙 수로에서 어업용으로 설계한 여러 가지 어선을 포함하지만 낚시용의 노 젓는 보트는 **제외한다(제8903호)**. 이러한 선박에는 트로울선(trawler)·참치잡이선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공장선(factory ship)(어류저장용 등)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시즌 동안은 유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어선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만, 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선박은 **제외한다(제8903호)**.

89.03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공기주입식 보트(견고한 선체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8903.11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짐을 실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903.12 --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짐을 실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903.19 -- 기타

- 범선(공기주입식을 제외하며, 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903.2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2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8903.2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 모터보트[공기주입식을 제외하며,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를 제외한다]

8903.3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3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8903.3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 기타

8903.93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99 -- 기타

이 호에는 유람용이나 운동용의 선박과 모든 노를 젓는 보트(rowing boat)와 카누(canoe)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요트(yacht)·마린제트(marine jet)와 그 밖의 범선(sailboat)과 모터보트(motorboat)·딩기(dinghy)·카약(kayak)·스컬(scuttle)·스키프(skiff)·페달로(pedalo)(페달 작동식 배의 형태)·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배·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inflatable)의 배와 보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노(oar)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lifeboat)도 분류한다(그 밖의 구명보트는 제8906호에 분류한다).

다만, 세일보드(sailboard)는 제외한다(제9506호).

○
○ ○

[소호해설]

소호 제8903.92호

“아웃보드모터(outboard motor)”는 제8407호의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89.04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s craft)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한다.

- (A) **예인선(曳引船 : tug)** : 예인선(曳引船)이란 본래 다른 선박을 끌기 위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해상이나 내륙의 항행에 사용하는 형의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독특한 모양과 강화된 선체, 해당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불균형한 강력한 엔진과 견인용 로프·밧줄 등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갑판 부착구에 의하여 다른 선박과 구별한다.
- (B) **푸셔크라프트(pushers craft)** : 이것은 부선·거룻배 등을 밀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선박이다. 푸셔크라프트는 주로 다른 선박을 밀기 위한 완충기(snub bow)와 승강식 조타실(신축식의 것도 있다)에 의하여 다른 선박과 구별한다.

이 호에는 예인선(曳引船)과 푸셔크라프트의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푸셔-티그(pushers-tug)**”도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푸셔크라프트와 같이 완충기(snub bow)를 갖추고 있지만, 부선 등을 끌거나 정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선미(船尾)가 경사진 선체로 되어 있다.

조난이 있을 때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설계된 예인선(曳引船)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선박은 여객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선박에는 소화기·펌프장치·화물가열장치 등의 특수한 보조 장치를 부착한 것도 있다. 다만, 소방선(fire-floats)은 **제외한다(제8905호)**.

89.05 -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艇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 준설선

8905.2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90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조명선(light-vessel) · 소방선(fire-float) · 준설선(dredger) · 기중기선(floating crane)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 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 선박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모든 종류의 준설선[예: 그랩(grab)식이나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繫留式) 부선; 심해 탐사 잠수정;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예: 데릭·기중기·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평저선(pontoon)과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한 평저선

집배(house-boat)·세탁선·제분선(製粉船) 또한 이 그룹에 분류한다.

(B) 부선거(艇船渠 : floating dock)

부선거(艇船渠)는 건선거(dry dock) 대신에 사용하는 부유식(浮遊式 : floating)의 작업장이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플랫폼과 측벽으로 구성되는 U자형 단면의 구조의 것으로서 수리선박을 입거시키기 위하여 일부를 물속에 가라앉힐 수 있도록 펌프실이 갖추어져 있다. 어떤 경우에 부선거(艇船渠)는 예인(曳引)될 수도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작용되는 다른 종류의 부선거(艇船渠)에는 자주식(自走式)으로서 한 강력한 엔진이 부착된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수륙 양용차나 그 밖의 선박의 수리나 수송에 사용한다.

(C)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drilling platform)나 작업대(production platform)

이러한 작업대는 일반적으로 원유나 천연 가스의 해저 매장량을 발견하거나 탐사용으로 설계되어 있다. 데릭(derrick)·크레인·펌프·시멘팅용 장치·사일로(silo) 등과 같이 굴착용이나 생산용에 필요한 장비 이외에 종업원을 위한 거주용 선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대는 탐사나 생산현장까지 견인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력 항행하거나 때로는 현장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유동(流動 : float)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주요 그룹으로 구분한다.

- (1) **자력으로 승강 가능한 작업대(self-elevating platform)** : 이것은 작업용 플랫폼 외에 해당 작업대를 부상(浮上 : float)시킬 수 있는 장치[선체·케이슨(caisson) 등]와 작업장의 해저(海底)에 고정시키고 수면 위에 작업대를 인상시키는 접어 넣을 수 있는 다리를 갖추고 있다.

- (2) **잠수식 작업대(submersible platform)** : 이 플랫폼의 하부구조는 수면 위 작업 플랫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저에 밸러스트탱크(ballast tank)를 장치하여 작업현장에 잠수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 밸러스트탱크(ballast tank)는 해저(sea bed)를 다소 깊이 관통하는 스커트(skirt)나 파일(pile)을 가진 것도 있다.
- (3) **반잠수식 작업대(semi-submersible platform)** : 이것은 잠수식 작업대와 유사하나 잠수 부분이 해저에 머무르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부상(浮上 : floating) 작업대는 앵커라인이나 자동위치 결정 장치에 의해 지정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한다.

원유나 천연가스의 해저 매장의 발견이나 탐사를 위하여 설계된 고정식 작업대로서 부상(浮上 : floating)식도 아니고 잠수식도 아닌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30호)**.

이 호에는 또한 페리보트(ferry-boat)(**제8901호**) · 어획물 가공용 공작선(factory ship)(**제8902호**) · 해저전선 부설선 · 기상 관측선(**제8906호**)도 **제외한다**.

89.06 -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 군함

8906.90 - 기타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선박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종류의 군함(warship)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전투용으로 설계한 군함 : 이것은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와 탄환 등의 발사체를 막는 보호용 방패(예: 장갑된 강판이나 복합방수 차단벽)를 내장한 것, 수중장치 [내자성(耐磁性) 기뢰탐지기(anti-magnetic-mine-detectors)]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레이더·소나·적외선 탐지기기·무선전송용의 도청방지장치 등의 탐색용 및 청음용 장비도 갖추고 있다.

이 범주의 선박은 이들의 빠른 속도와 기동성·승무원의 규모·거대한 유류탱크·해상에서 탄약의 운송과 이용에 쓰는 특수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상선(商船)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다.

(b) 상륙용 주정(landing craft)이나 특수함대 보조정[탄약이나 기뢰(機雷) 등의 수송용]이나 군수송선과 같은 것으로 무기나 장갑판을 갖추고는 있지 않으나 대체로 전투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수 선박

(c) 잠수함(submarine)

(2) 군함의 특징을 갖는 선박으로 공공기관(예: 세관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것

(3) 조난이 있을 때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해안 주위의 어느 특정 지점에 설치해 놓은 구명보트는 물론 선박의 갑판 위에 장치하기 위한 구명보트. 그러나 노(oar)를 저어 움직이는 구명보트는 **제8903호**에 분류한다.

(4) 학술연구용 선박 ; 실험용 선박 ; 기상 관측선

(5) 부표(buoy)의 수송용과 계류용(繫留用)의 선박 ; 해저전선부설용 선박(예: 텔레커뮤니케이션용)

(6) 수로안내선(pilot-boat)

(7) 쇄빙선(ice-breaker)

(8) 병원선(hospital ship)

(9) 준설물(浚渫物) 처리용의 토운선(土運船) 등

이 호에는 또한 “**드라콘(dracone)**”를 포함하며, 즉 이것은 액체와 그 밖의 물품의 수상운송(간단한 견인에 의하여)용의 접을 수 있는 장치로서 도포한 방직용 섬유직물로 만든 신축성 케이싱(flexible casing)으로 되어 있으며, 그 모양[보통 시가(cigar)와 같은 것]과 안전장치, 예인(曳引)장치, 때로는 부력 튜브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의 존재에 의하여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평저선(平底船 : pontoon)(여객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평평한 갑판의 선박)(**제8901호**)
- (b) 명백히 기중기선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설계한 평저선(平底船 : pontoon)(**제8905호**)
- (c) 가교(假橋 : temporary bridge) 등의 지지에 사용하는 중공(中空 : hollow) 원통형의 수상 작업대(pontoon)와 모든 종류의 부교(浮橋 : raft)(**제8907호**)

89.07 -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 탱크 · 코퍼댐(coffer-dam) · 부잔교(landing stage) · 부표 · 수로부표]

8907.10 - 공기주입식 부교

8907.90 - 기타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 않는** 특정 물에 뜨는(floating) 구조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가교(假橋)의 지지 등에 사용하는 중공(中空)통형의 부선거(舢舨渠), 다만,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부선거(舢舨渠)는 **제외한다(제8901호나 제8905호)**.
- (2) 살아있는 갑각류나 어류를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뜨는 탱크
- (3) 특정 항구에서 선박에 기름 · 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뜨는 탱크
- (4) 교량건설 등에 사용하는 케이스형의 코퍼댐(coffer-dam)
- (5) 부잔교(floating landing-stage)
- (6) 계류(繫留)용 부표 · 표시용 부표 · 조명용 · 경보용 부표 등의 부표
- (7) 수로 · 위험수역 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수로부표
- (8) 배의 재부양(再浮揚 : refloating)에 사용하는 재부양(再浮揚)기기
- (9) 바다청소(mine-sweeping)작업용의 부유식 패러베인(paravane)
- (10) 원형의 부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교(raft) : 난파당한 사람의 운송용으로 해면에 접촉 되면 자동적으로 부풀리게 한다.
- (11) 독문(dock-gate)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물에 뜨는 구조물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외부의 수단(즉, 승강장치)에 의하여 승강되는 금속형의 체임버(chamber)로 구성되는 다이빙 벨(diving bell); 이러한 것은 보통 **제8479호**에 분류한다.
- (b) 구명벨트(life-belt)와 구명재킷(胴着 : life-jacket)(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c) 세일보드(sailboard)(**제9506호**)

89.08 -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7호까지의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로서 해체할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이러한 선박은 폐선되거나 손상된 것일 수 있고, 장치된 기구나 기계류 등은 제시하기 전에 제거되었을 수도 있다.

제 18 부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 류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제4205호),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 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신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
- 다. 제6903호의 내화제품과 제6909호의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 라.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광학소자를 제외한 비금속(卑金屬)이나 귀금속으로 만든 거울(제8306호나 제71류)
- 마. 제7007호 · 제7008호 · 제7011호 · 제7014호 · 제7015호 · 제7017호의 물품
-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만,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
-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앙측정식 계수기 · 검사기나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 추(제8423호),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제8425호부터 제8428호까지), 각종 종이나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가공물이나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은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벨브나 그 밖의 기기,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고감도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drawing)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 아. 사이클용 · 자동차용 서치라이트(searchlight)나 스포트라이트(spotlight)(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인 음성의 기록용 · 재생용 · 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 ·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 수치 제어기기(제8537호),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제8539호),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
- 자.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searchlight)와 스포트라이트(spotlight)
- 차. 제95류의 물품
- 카. 제9620호의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타. 용적 측정구(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파. 스푼(spool) · 릴(reel)이나 이와 유사한 지지구(支持具)[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23호나 제15부)]

**제18부
제90류**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3.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4. 제9005호에서는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수함용이나 전차용 잠망경과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용 망원경은 제외하며, 이러한 망원조준기, 잠망경과 망원경은 제9013호로 분류한다.
5.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
6.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말에 맞게 제작된 쥘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7.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내주:

1. 소호 제9006.53호·제9006.59호에서 “특수용도 사진기”란 현미경용·반도체소자 촬영용과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총설

(I)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 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 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업 분야(측정이나 검사·관측 등), 의학 분야에 사용한다.

특히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광범위한 광학소자와 광학기기 : 제9001호와 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소자뿐만 아니라 제9004호의 안경에서 천체용·사진용·영화용·현미경의 관찰용에 사용하는 복잡한 기기를 포함한다.
- (B) 특정 용도(측량용·기상용·제도용·계산용 등)의 기기
- (C)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요법용·기계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
- (D) 재료 시험용 기기
- (E) 실험실용 기기
- (F) 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자동조정용의 기기(광학식이나 전기식과 특히 이 류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기기 중 몇몇의 것은 특정의 호에 품명이 열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광학현미경(제9011호), 전자현미경(제9012호)의 경우이다. 그 밖의 기기들은 해당 과학·공업 등에 관련되는 각 호에 보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현되어 있다(예: 제9005호의 천체관측용기기·제9015호의 토지측량기기·제9022호의 엑스선 등을 사용하는 기기). 이 류에는 또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진공기기도 포함한다(제9018호).

이 류에 해당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정밀기기이나 특정의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보통의 보호용 고글(제9004호)·단순한 확대경과 확대식이 아닌 잠망경(제9013호)·눈금자(divided scale)와 학교용 자(제9017호)와 장식적인 습도계(정밀도에는 상관없다)(제9025호)도 이 류에 포함한다.

이 류에 분류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은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예: 고무나 가죽으로 만든 와셔(washer)·개스킷(gasket), 가죽으로 만든 계기용(計器用) 다이어프램] **이외에는**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석·반귀석(천연·합성이나 재생)을 포함한다].

(II)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기기
(통칙 제2호가목 참조)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전한 기기나 완성된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해당하는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으로 분류한다[예: 광학소자(optical element) 없이 제시된 사진기·현미경이나 적산(積算)기구를 갖추지 않은 전력계].

(III) 부분품과 부속품
(류의 주 제2호)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이 류의 어느 특정호나 **제84류·제85류·제91류**(잔여 호인 **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의 진공펌프는 **제8414호**의 펌프에 분류하고; 변압기·전자석·축전기·저항기·계전기·램프·밸브 등은 **제85류**에 분류하며; **제9001호나 제9002호**의 광학소자는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며;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는 항상 **제91류**에 분류하며; 사진용 카메라는 비록 다른 기기(현미경·스트로보스코프 등)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일지라도 **제9006호**에 분류한다.
- (2)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여러 가지 부문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이들이 완전한 기기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한 제9033호**에 분류한다 [위의 (1)항 참조].

(IV) 다기능기계나 복합기계 ; 기능단위 기계
(류의 주 제3호)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주 제4호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 (제16부 총설 VI와 VII 참조).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 그 기계의 주 기능(principle function)에 따라 분류한다.

다기능 기계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나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조적이며 이 류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으로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나 기기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앞에서 설명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었거나 동상(同床)·동일 프레임(frame)·동일 하우징(housing)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나 기기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同床)·동일 프레임·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않은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한다**.

복합기계는 사용 중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베이스·프레임·하우징에 차륜이 부착되어 있어도 상관없으나 그로 인하여 품목분류표상의 특정 호에 분류하는 물품(예: 차량)의 성격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상(floors)·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장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류에는 예를 들면, **아날로그형이나 디지털형 원격측정장치**를 구성하는 전기식(전자식을 포함한다)기기를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서 포함한다. 이러한 것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송신용 단말기

- (i) **일차검출기(primary detector)**(변환기·송신기·아날로그-디지털형 변환기 등) : 특성에 관계없이 측정하여야 할 양(量)을 비례되는 전류·전압·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기
- (ii) **측정증폭기(measurement amplifier), 송신기(transmitter)와 수신기(receiver)의 기본장치** : 전류·전압·디지털 신호를 (필요할 때) 펄스(pulse)나 주파수변조 송신기에 의해 필요한 수준까지 변환시키는 장치
- (iii) **펄스(pulse)나 주파수 변조송신기(frequency-modulated transmitter)** :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를 다른 지점으로 송신하는 기기

(II) 수신용 단말기

- (i) **펄스, 주파수변조(frequency-modulated)나 디지털신호 수신기(digital signal receiver)** : 송신한 정보를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기
- (ii) **측정증폭기(measurement amplifier)나 변환기(converter)** : (필요할 때) 아날로그나 디지털신호를 증폭시키는 기기
- (iii) **지시(indicating)기기나 기록(recording)기기** : 일차 검출량을 측정하며, 기계식 지침이나 광전자 디스플레이를 갖춘 기기

제18부
제90류

원격측정장치는 주로 기름·가스와 생산(production)용의 파이프라인(pipeline), 물, 가스와 폐수의 처리장치와 그 주위를 감시하는 장치에 사용한다.

펄스를 원격 측정하는 유선이나 무선송신기와 수신기는 각 해당하는 호(경우에 따라서 **제8517호**·**제8525호**·**제8527호**)에 분류한다. 단, 이 기기들이 앞에서 설명한 (I)과 (II)에 언급한 기기와 단일체로서 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기기가 제90류의 주 제3호의 의미에 속하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 형성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 완전한 유닛은 이 류에 분류한다.

*
* *

해설서 본문에서 설명된 제외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은 항상 이 류에서 **제외한다**.

- (a) 기기에 사용하거나 기계적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경화(硬化)고무 이외의 가황(加黃) 고무 제품(**제4016호**)·가죽제품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4205호**)·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 (b)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c) 권양(捲揚)용 기계나 취급(handling)용 기계(**제8425호**부터 **제8428호**까지와 **제8486호**) ; **제8466호**의 동작기계나 유압절단기의 가공물이나 공구의 조정용 부착물[눈금을 보기 위한 광학적 장치를 갖춘 부착물(예: 광학식의 분할대)은 포함하지만 그 자체가 본래 광학기기의 특성이 있는 것(예: 얼라인먼트(alignment)식 망원경)은 **제외한다**]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 기기와 무선원격제어기기(**제8526호**)
- (d) 이 류의 기기가 장치된 우주선(**제8802호**)
- (e) **제95류**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나 그 밖의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f) 용량 측정구 ;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g) 스폴(spool)·릴(reel)이나 이와 유사한 지지구(支持具 : support)(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예: **제3923호**나 **제15부**)

90.01 -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9001.10 -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 9001.2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 9001.30 - 콘택트렌즈
- 9001.4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 9001.5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 900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광섬유(optical fibre)와 광섬유 다발(optical fibre bundle),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

광섬유(optical fibre)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심층(concentric layer)으로 구성된다. 유리에서 인발(引拔)한 것은 플라스틱이 아주 얇게 도포되어 있으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굴절이 덜한 섬유로 되어 있다. 광섬유는 보통 릴(reel) 모양으로 제시되며 수 킬로미터의 길이로 된 경우도 있다. 광섬유는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케이블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광섬유 다발(optical fibre bundle)은 뿔뿔한 상태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섬유를 전체 길이에 걸쳐서 결합체로 응결시켰으며, 광섬유 다발이 유연한 상태의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광섬유 다발의 끝만이 묶여져 있다. 광섬유 다발이 정연하게 묶여져 있을 경우는 영상을 전송하는데 사용하나, 무작위로 묶여진 경우에는 조명용의 빛을 전송하는 데만 적합하다.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도 있다)은 하나 이상의 광섬유 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이며 이 케이블의 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된 것은 아니다.

광섬유 다발과 케이블은 주로 광학기기에 사용하며 특히 제9018호의 내시경에 사용한다.

(B) 판(시트나 플레이트) 모양으로 만든 편광 재료(polarising material in sheet or plate) :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을 특수 처리한 것이나 “활성(active)” 플라스틱으로 된 층의 일면이나 양면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지지(支持)한 판으로 되어 있다. 이들 판상의 재료는 아래 (6)항에서 설명된 편광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다.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로서 테나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모양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 [즉, 필요한 만곡(彎曲 : curvature)을 갖게 하는 것 · 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것 등]과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은 처음에는 거친 연마재로, 다음은 좀 더 미세한 연마재로 그 표면을 연마해서 대강 만들어(roughing), 바로 맞추고(trueing), 다듬어서(smoothing) 연마하는(polishing)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정확한 직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가 연마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센터링(centring)과 에징(edging)작업이라고 한다.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나 일부가 연마된 광학소자만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마한 물품과 성형 후 연마한 물품이 이 호에 속한다. 다만,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하나나 그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이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물품은 **제70류**로 분류한다.

-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소자(광학적 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테나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예: 석영(용융석영은 제외한다) · 형석(螢石 : fluorspar) ·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소자 ; 산화마그네슘이나 알칼리 ·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 모양의 광학소자]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소자는 빛(가시광선 · 자외선 ·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 · 감쇄 · 여과 · 분산 ·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

오로지 수송 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임시의 테나 자루를 부착시킨 광학소자는 테나 자루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프리즘(prism)과 렌즈(lens)** : 접착제로 붙여 결합한 복합된 프리즘과 렌즈를 포함한다(가장자리를 완성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평면(plane)이나 평행평면(plane-parallel face)으로 된 판과 디스크**[예: 평면도(flatness) 검사용의 시험판(proof plane)이나 광선정반(光線定盤 : optical flat)]
- (3) **시력교정용 렌즈(ophthalmic lens)** : 이들은 비구면형 · 구면형 · 구원통면형 · 단초점형(單焦點形) · 2초점형 · 다초점형일수도 있으며, **콘택트렌즈**도 포함한다.
- (4) **광학소자(optical element)를 구성하는 거울(鏡 : mirror)** :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망원경 · 영사기 · 현미경과 내과용 · 치과용 · 외과용의 의료용기기 등에 사용하며, 때로는 차량용 백미러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
- (5) **컬러필터(colour filter)**(예: 사진기용)
- (6) **편광용품(polarising element)** : 현미경이나 그 밖의 과학기기용의 것 ; 선글라스용의 것 ; 입체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안경에 사용하는 것 등
- (7) **회절격자(回折格子)**. 이들은 다음의 것인 경우도 있다.
 - (a) 고도로 연마된 유리에 일정 간격의 다수의 평행선(예: 1mm당 100개 라인)이 새겨진 것
 - (b) “복제판(replica)”의 격자 : 유리판 등과 같은 지지판에 플라스틱이나 젤라틴의 박막을 입힌 것으로서, 이 박막에 원판의 회절선을 새긴 것
 회절격자(回折格子)는 스펙트럼의 연구 등에 프리즘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 (8) **간섭필터(interference filter)** :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두 개의 유리판이나 두 개의 45° 유리체 프리즘(합하여 입방체를 형성한다)의 사이에 불화마그네슘과 은의 매우 얇은 필름(film)을 끼워서 만든 것이다. 이들은 컬러필터로서 광선살(beam of light)을 두 개의 요소로 분리시키는데 사용한다.
- (9) **망판(網板 : halftone)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print screen)으로서 일반적으로 정교하게 연마한 유리로 만든 원형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그라비아 인쇄용(photogravure)이나 사진복사조판용의 스크린원판] :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 (i) 매우 가는 평행선을 새기고, 특수한 바니시(vernish)로 불투명하게 한 두 개의 유리판을 양쪽의 선이 정확히 직각이 되도록 함께 붙인 것 ;
 - (ii) 한 장의 유리판상에 움푹 들어간 작은 구멍(보통 정방형)을 새기고 특수한 바니시로 불투명하게 한 것

위에 열거한 광학소자(렌즈·프리즘 등)에는 착색된 것, 빙정석(水晶石)·불화칼슘이나 불화마그네슘 등의 반사 방지 막으로 피복된 것도 있다. 이것은 이 호의 광학소자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배양단결정으로서 광학소자가 아닌 것(일반적으로 **제3824호**)
- (b) **제7009호**의 거울(즉,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않은 유리거울)·단순한 평면이나 만곡의(curved) 거울(예: 면도용 거울과 파우더 콤팩트용 거울)은 **제7009호**에 분류한다.
- (c) **제7014호**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 즉,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소자로서 보통 성형된 것(제7014호의 해설 참조)
- (d) **제7015호**의 유리용품으로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예: 콘택트렌즈용·시력교정안경렌즈용·고글용·보호안경용·계기(計器) 등의 다이얼(dial)보호용의 블랭크(blank)]
- (e) 광학 용품을 구성하지 않는 귀금속으로 만든 거울(**제71류**)이나 비(卑)금속으로 만든 거울(**제8306호**)
- (f) 광섬유·광섬유 다발·광섬유 케이블용 접속자(**제8536호**)
- (g) 섬유를 개별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

90.02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대물렌즈

9002.11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9002.19 -- 기타

9002.20 - 필터

9002.90 - 기타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나 자루가 부착된 광학소자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지식 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거울(**제9018호**)이다.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영사기용의 대물렌즈·어디셔널렌즈(additional lens)·칼라 필터·뷰파인더(viewfinder) 등
- (2) 현미경용이나 편광계용의 편광필터
- (3) 천체관측용 기기·쌍안경·굴절식의 망원경·현미경 등의 접안경과 대물경(편광식의 것을 포함한다)
- (4) 물리적·화학적 분석용의 기기에 사용하는 프리즘으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편광계 등)
- (5) 망원경·투사기·현미경·의료용기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
- (6) 등대나 수로부표(beacon)용의 광학소자(렌즈와 프리즘)로 패널이나 드럼에 부착되어 있는 것
- (7) 테나 자루가 있는 렌즈로서 광학대(optical bench)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
- (8) 테나 자루가 있는 망판(halftone)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

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

접안렌즈란 눈 근처에 위치한 광학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확대 영상이 관찰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일시적으로 장착구가 부착되어 있는 광학소자. 단, 수송 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9001호**).
- (b) 광학적으로 가공된 테나 자루가 있는 유리로 만든 거울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예: 어떤 종류의 백미러·굴뚝·배수의 검사용 거울과 통풍구 관측용의 특수 거울)(**제9013호**)
- (c) 검안하기 위하여 특수한 틀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렌즈의 세트로서 케이스에 넣어진 것(**제9018호**)

90.03 - 안경 · 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 테와 장착구

9003.1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003.1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003.90 - 부분품

이 호에는 제9004호의 안경에 사용하는 테(frame)와 장착구(mountings)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해당 호의 해설 참조). 일반적으로 비금속(卑金屬)·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플라스틱·귀갑(龜甲 : tortoise-shell)·진주모패각으로 만든 것이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보호용 안경의 테로서 가죽제·고무제·섬유제의 것도 있다.

안경테의 부분품은 사이드 피이스(side-piece)·사이드 피이스의 심(core)·경첩(hinge)·조인트(joint)·안경의 바퀴테(eye-rim)·브리지·노우즈피이스(nose-piece)·코안경용 스프링기구·손잡이가 긴 안경의 손잡이 등이 있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크루(screw)·체인(고정장치가 없는 것)·스프링은 장착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바목 참조].

또한 이 호에는 때로는 “안경(spectacles)”으로 호칭되나 제9004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의 장착구(montings)나 그 부분품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안과 의사가 눈의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한 안경(**제9018호**)의 경우이다.

90.04 -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 선글라스

9004.90 - 기타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며 ;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코안경·다리가 긴 안경·외알 안경 등에는 보통 광학적으로 가공된 렌즈를 사용된다.

보호용 안경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유리(광학적 연마나 착색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안전 유리·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폴리스티렌 등]·운모·금속[와이어 거즈(wire gauze)나 세공을 낸 판]으로 만든 평평하거나 구부러진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용 안경에는 선글라스·등산이나 겨울철 스포츠에 사용하는 안경, 항공용·자동차용·모터사이클용·화학자용·용접공용·주조공용·모래분사공용·전기기술자용·도로공용·채석공용 등의 고글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수중용 고글 ; 땀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경(일반적으로 시력교정용 안경에 붙이기 위하여 보호필터나 어떤 경우 부가적인 시력교정용 렌즈로 사용하는 것)(예: 선글라스) ; 플라스틱 렌즈가 부착된 입체 사진용 편광안경(판지의 테가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부분품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나 장착구와 그 부분품은 **제9003호**에 분류한다. 광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접안경(eyepiece)은 **제7015호**에,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접안경은 **제9001호**에 ;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접안경이 광학소자(optical element)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9001호**에 ; 그 밖의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눈만**을 덮도록 설계된 안경에 한정하여 분류하고, 안면의 대부분을 덮거나 보호하도록 만든 물품은 **제외한다**[예: 용접공의 얼굴 가리개(visor) ; 모터사이클리스트용 스크린과 아이셰이드(eye-shade) ; 수중수영용의 페이스마스크(face mask)].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9001호**의 콘택트렌즈
- (b) 안경의 모양으로 만든 오페라 글라스(opera glasses)나 레이싱글라스(racing glasses)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9005호**)
- (c) 완구용 안경(**제9503호**)
- (d) 카니발용품(**제9505호**)

**90.05 - 쌍안경 · 단안경 · 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 쌍안경

9005.80 - 그 밖의 기기

9005.9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쌍안경(binocular)** : 오페라 글라스(opera glasses) · 여행용이나 수렵용의 쌍안경 · 군용 쌍안경(야간쌍안경과 특정의 잠망경식 쌍안경) · 안경의 모양으로 된 쌍안경
- (2) 수렵용 · 여행용 · 해양용 · 소화용 · 휴양지용(풍경이나 공중의 관측용) 등의 **망원경(telescope)** : 이러한 것은 단일식(포켓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의 망원경)이나 초점을 정하기 위한 슬라이딩 드로어(sliding drawer) 모양의 것이 있으며 ; 스탠드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어떤 종류의 것에는 코인을 삽입한 후에 볼 수 있도록 어떤 기구가 갖추어진 것도 있다.
- (3) **굴절식 천체망원경(astronomical refracting telescope)** : 대물경으로서의 거울을 갖춘 반사망원경과는 달리 굴절식 망원경의 대물경은 렌즈의 시스템(직경이 큰 것도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굴절식 망원경은 빛을 감하게 하는 직립 접안경을 장비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육안에 의하여, 육안과 사진에 의하여, 사진만에 의하여 관측되는 방식의 굴절식 망원경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진기가 완전한 장치의 필요불가결한 일부분을 구성하여 장비된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하며 ; 그러나 완전한 장치의 필요불가결한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사진기는 **제9006호**에 분류한다.

- (4) **반사망원경(reflecting telescope)** : 반사망원경은 가장 일반적인 천체 관측용의 기기이다. 최초에 물체의 영상(image)을 잡는 대물경은 상당히 큰 직경을 갖는 오목면의 포물선면상으로 구성되며 ; 반사면은 은이나 알루미늄으로 도금되어 있다.

반사망원경은 보통 상당수의 관련 기기로 대형장치가 되어 있는 스탠드 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진기가 완전한 장치의 필요불가결한 일부분을 구성하여 장비된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하며 ; 그러나 완전한 장치의 필요불가결한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사진기는 **제90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때때로 슈미트 카메라(Schmidt camera)라고 칭하는 슈미트 반사망원경(Schmidt reflecting telescope)을 포함한다. 이것은 천체의 사진 관측에 전용한다. 이것은 구(球) 모양의 미러와 그 호의 중심에 있는 미러(mirror)에 평행으로 놓인 수정판을 이용한 것이며, 그 영상은 초점으로 요(凹 : concave)면의 필름 위에 기록한다.

- (5) 광전자배증관(photo-multiplier)이나 영상변환관(image converter tube)이 부착된 **천체망원경(astronomical telescope)** : 이러한 형의 망원경에 있어서는, 입사광의 에너지가 접안경의 위치에 놓인 광전면(光電面)으로부터 자유전자로서 방출된다. 이 전자는 증폭되어 당초 망원경으로 입사한 광량으로서 직접 측정되거나 사진건판이나 형광관위에 초점을 정하여 영상을 형성(예: 마그네틱 렌즈에 의하여)시킨다.
- (6) **자오의(子午儀)** : 관측지점에 있는 자오선상의 천체의 외관상의 통과(지구의 자전으로 인한)를 관측하는데 사용한다. 주로 동서(東西)의 수평축 위에 설치되어 자오면 내에서 이동될 수 있도록 만든 망원경으로 되어 있다.
- (7) **적도의(equatorial telescope)** : 망원경이 지축의 방향에 평행되는 축(극축)과 이 축에 대하여 수직되는 축(적위축)의 양축을 회전하도록 적도의 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 (8) **천정의(天頂儀)** : 망원경을 수평축과 수직축의 양축의 주위를 회전하도록 설치한 것이다.
- (9) **경위의(經緯儀)나 방위환(方位環)** : 망원경이 수평축을 회전축으로 한데 반하여 그 프레임(frame)의 수직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기기로서 고도와 방위각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된 소형의 것으로 토지측량에 사용하는 세오돌라이트(theodolite)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5호)**.

- (10) **척경회전의(coelostats)** : 척경회전의는 수직이나 수평의 방향으로 고정된 기기[망원경·단광(單光)태양사진의(spectroheliograph)]에 소정의 천체의 일부를 반사시킴으로써 천체의 관측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이며 필수적으로 두 개의 평면경으로 되어 있다. 이 평면경 중의 하나는 시계 무브먼트(movement)에 의하여 조절되며 48시간에 일회전을 한다.

일광반사장치(heliostat)와 태양경(siderostat)은 천체용으로 사용하는 특수한 형의 척경회전의이다. 일광반사장치로도 불리는 어떤 기기는 토지측량에 사용하며 ; 이러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5호)**.

- (11) **단광(單光)태양사진(spectroheliograph)과 태양분광기(spectroheliograph)** : 이러한 기기는 태양의 연구에 사용한다. 단광(單光)태양사진의는 여러 가지로 설정된 파장만에 의하여 태양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접안경의 위치에 세극(細隙 : slit)을 갖춘 분광기를 놓고 소정된 파장의 빛만이 통과되어 사진건판 위에 닿도록 되어 있다. 태양분광기는 단광(單光)태양사진의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나, 태양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속히 진동되는 세극(oscillating slit)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방법, 예를 들면, 고정된 세극을 갖춘 회전식 프리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도 같은 결과는 얻어진다.
- (12) **태양의(heliometer)** : 망원경의 대물렌즈가 직경에 따라 이분되어 그 두 렌즈의 절반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며, 태양의 시각과 두 개의 천체 간의 각(角)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13) **광관의(光冠儀 : coronagraph)와 이와 유사한 기기** : 개기일식 시기 이외의 태양의 코로나(corona)를 관측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확대한 적외선의 영상을 가시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영상변환관을 내장한 잠망경, 특히 쌍안경 등도 포함하며 ; 이러한 적외선쌍안경 등은 야간에 사용하며 특히 군용의 것이 많다. 또한 이 호에는 영상이 보이는 가시 한계점 밑에 있는 영상의 밝기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광선 증폭기[영상 증강장치(image intensifier)로 알려져 있다]를 이용하는 망원경과 쌍안경과 유사물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4호에 따라 이 호에는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함이나 탱크용의 잠망경·이 류의 기기용 망원경[예: 세오돌라이트(theodolite)·수준기(水準器)나 그 밖의 측정기기용 망원경]이나 제16부의 기기용 망원경은 **제외한다(제9013호)**.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테·하우징(housing)·관(tube)·장착구; 흑성의 직경을 측정기 위하여 적도위에 사용하는 실선이 있는 마이크로미터(filar micrometer)(이 장치는 망원경의 접안경에 부착되어 두 개의 고정 와이어와 한 개의 이동 와이어를 갖춘 눈금을 매긴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체관측용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모터에 사용하는 게리쉬 드라이브(Gerrish drive)가 있다.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상부구조물로서 이 호의 기기를 설치하거나 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돔(dome)·플랫폼·제어반(control board) 등]; 이러한 것은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15부**).
- (b) 거울·렌즈·프리즘과 같은 광학소자로 별도 제시하는 것(경우에 따라서 **제9001호**나 **제9002호**)
- (c) 천문학에서 하늘을 찍은 사진과 비교하여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데 사용하는 섬광 현미경(blink microscope) (**제9011호**)
- (d) “도어아이(door eye)”나 스루도어뷰어(through door viewer)(**제9013호**)
- (e) 별과의 관계에 있는 지상의 소재지점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기기[예: 육분의(六分儀: sextant)](**제9014호**)
- (f) 분광사진의 연구용 측미광도계(microphotometer)나 측미농도계(microdensitometer)(**제9027호**)
- (g) 천문학용 시계(**제91류**)

90.06 -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9006.3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 9006.40 - 즉석인화 사진기
 - 그 밖의 사진기
- 9006.53 -- 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
- 9006.59 -- 기타
 -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 9006.61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 9006.69 -- 기타
 - 부분품과 부속품
- 9006.91 -- 카메라용
- 9006.99 -- 기타

(I)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영화용 촬영기 **이외의** 여러 가지 사진기를 분류한다. 전문가용인지 아마추어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광학소자[대물렌즈·뷰파인더(viewfinder) 등]와 함께 제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사진기는 사진기의 광학 시스템으로부터 영상이나 빛에 화학약품이 처리된 필름(예: 은 할로겐 화합물)·판·종이를 노출시켜 필름·판·종이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가시적인 영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다.

사진기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러나 보통 형의 것은 원칙적으로 명암상자·렌즈·셔터·조리개·건판이나 필름의 홀더·뷰파인더(viewfinder)로 구성된다. 이러한 각 부의 본질적 특징, 다양성에 의하여 사진기의 형태가 구별지어진다. 이러한 것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A) **박스사진기(box camera)** ; 가장 간단한 구조의 것이다.
- (B) **접이식(folding or collapsible) 사진기** : 스튜디오용이나 아마추어용으로 사용한다.
- (C) **반사사진기(reflex camera)** : 이들 사진기의 대부분은 대물렌즈에 의해 받은 영상을 거울로부터 특수 프리즘을 통해 뷰파인더(viewfinder)에 반사한다[일안(一眼) 반사식(single lens reflex)]. 이러한 형태의 다른 기기는 보조 대물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영상이 카메라 상부의 스크린에 반사된다[이안(二眼) 반사식(twin lens reflex)].

(D) **포켓사진기(pocket camera)** : 일반적으로 필름 카세트를 사용하나 ; 어떤 것은 디스크를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사진기는 자동초점 조절기와 필름 감기용 모터 드라이브(motor drive)·일체형의 플래시·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조정되는 액정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 그룹의 카메라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스테레오 사진기(stereo camera)** : 두 개의 동일한 렌즈와 하나의 셔터를 갖춘 것으로 동시에 두 개의 영상을 노출시켜준다.
- (2) **파노라마식 사진기(panoramic camera)** : 넓은 풍경이나 사람들의 긴 행렬을 촬영하는데 사용한다. 이 사진기는 수직축에 연해서 일정 속도로 회전되며, 수직의 가느다란 틈 slit 이 건판이나 필름 위를 이동함으로써 노출이 된다.
- (3) **기록사진기(recording camera)** : 일반적으로 셔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필름은 렌즈의 뒤에서 연속적으로 이동한다. 보통 다른 기기[예: 음극선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결합되어 사용하며, 일시적이고 초고속적인 현상을 기록하는데 사용한다.
- (4) **즉석 인화사진기(instant print camera)(휴대형이나 캐비닛형)** : **현상가공이 노출 후 자동적으로 수행되어** 단시간에 사진이 완성되는 것. 코인·토큰·자기카드로 작동되는 캐비닛 형의 즉석인화사진기는 제8476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로 분류한다.
- (5) **광각(廣角)렌즈를 갖춘 사진기(camera with wide angle lens)** : 매우 넓은 시야를 촬영하는 것이다. 지평의 전경을 촬영하는 곳에는 특수렌즈를 사용한다. 극광각 사진기는 셔터로 동시에 노출하는 동안에 렌즈를 회전시킨다.
- (6) **“사용후 버리는” 사진기(“disposable” camera)** : “일회용(single-use or one-time use)” 사진기라고도 하며 필름이 사전에 장전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 후에 교체하지는 않는다.
- (7) **뷰 사진기(view camera)** : 고정된 받침대 위에서 회전하는 전면 패널과 후면 패널에 부착된 유연성 있는 주름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패널은 보드에 탑재된 렌즈를 갖고 있으며 후면 패널은 필름홀더를 포함하고 있다. 주름상자는 렌즈보드를 필름홀더에 연결하여 이들을 서로간의 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 (8) **밀폐용·방수용의 케이스를 갖춘 사진기(cameras with air-and watertight case)** : 수중사진용의 것
- (9) **자동셔터를 갖춘 사진기(cameras with automatic shutter release)**(예: 전자적으로 조작되는 셔터를 갖춘 것) : 셔터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로 조절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일련의 사진이 찍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형에는 상대방이 모르게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기도 포함하며 ; 이러한 사진기에는 셔터 작동기구의 회로에 놓이는 광전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소형시계의 형으로 되어 있다.
- (10) **공중측량용 사진기(aerial survey camera)** :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사진촬영을 하여 지상의 일부를 중복하여 촬영하도록 만들어졌다. 어떤 공중측량용 사진기는 수직과 경사된 지상사진을 찍기 위한 복수렌즈를 갖추고 있다. 이 그룹에는 공중사진측량용 사진기를 포함한다.

- (11) **지상사진측량용사진기(camera for terrestrial photogrammetry)** : 두 개의 사진기가 삼각대에 상호 연결되어 부착되었으며 동시에 사진을 찍게 되어 있다. 이 사진기는 주로 고고학 조사·기념비의 유지나 도로사고에 사용한다.
- (12) **법정용이나 범죄학용 비교사진기(comparison camera for forensic or criminological purpose)** : 두 개의 물건을 동시에 촬영하여 그 영상을 비교하는 것인데 ; 이 사진기는 지문의 대조·위조품의 감정 등에 사용한다.
- (13) **내과용·외과용 사진기(camera for medical or surgical purpose)** : 예를 들면, 위(胃) 속에 사진기를 삽입시켜 검사하고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디오 카메라는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제8525호)**.

- (14) **현미경사진용 카메라(camera for microphotography)**
- (15) **문서복사용 사진기(camera used for copying documents)** : 편지·영수증·수표·어음·주문서의 문서류를 복사하며, 마이크로필름(microfilm)·마이크로피쉬(microfiche)·그 밖의 마이크로폼(microform)이나 감광지(selective paper)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 (16) **레이저포토플로터(laser photoplotter)** :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식을 레이저 빔(laser beam)을 사용하여 감광성 필름 위에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의 **잠상(潛像)으로 변환시킨다**(이후에 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는데 사용한다). 키보드·스크린(음극선관)·래스터(raster) 영상 처리기·이미지 복제기로 구성되어 있다.
- (17) **사진방법에 의한 인쇄제판용의 사진기** : 이러한 기기는 상당히 대형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설명한 사진용 사진기의 형태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수직형 사진기·수평형 사진기·삼원색 사진기 등
 - (ii) 손이나 기계로 조절하여 활판을 촬영하는 사진기
 - (iii) 도해(圖解 : illustration)(사진·투명화 등) 속의 원색을 선택하는 기기 : 본질적으로 한 개의 광학장치와 한 개의 전자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사되어 수정된 원판의 것을 사진방법에 의하여 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인쇄제판 제조에 사용한다.
 - (iv) 레이저포토플로터(laser photoplotter) :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식을 레이저 빔(laser beam)을 사용하여 감광성 필름 위에 잠상(潛像)[예: 연속하는 톤(continuous-tone)의 디지털 아트웍(digital artwork)을 재생할 수 있는 컬러 트랜스페어런시(colour transparency)]으로 변환시킨다. 영상을 복제하려면 먼저 원색(파랑·빨강·노랑)을 골라낸 후 각각의 색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래스터(raster) 영상 처리기를 사용하여 래스터(rasterized) 데이터로 변환시킨다. 래스터 영상 처리기는 포토플로터(photoplotter)에 결합되어 있기도 한다.

사진식 복사나 열복사 과정에 의한 인쇄제판용의 사진기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8443호**에 분류한다. 사진 확대기와 사진축소기는 **제9008호**에 분류한다.

(II)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이 그룹에는 사진현상소나 그라비아 사진작업(photogravure work)에서 직업사진가나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사용하는 사진용의 섬광기구와 섬광전구를 포함한다.

이 장치는 매우 단시간[플래시(flash)]에 매우 밝은 빛을 내며 이런 점에서 제9405호의 사진 조명기구와는 구별된다.

사진용 섬광기구는 전기나 기계점화식 장치나 방전램프에 의하여 발생한다(제8539호 해설 참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별도로 분리된 섬광전구(separate flashbulb)

이 경우에 섬광은 전류에 의하여 유발되는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발생한다.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활성물질과 점화기구(필라멘트나 전극)가 봉입된 전구로 되어 있다.

섬광전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은 다음과 같다.

- (i) 알루미늄·지르코늄·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알루미늄-지르코늄합금의 선이나 좁게 절단된(細斷) 스트립(strip)을 내장한 산소를 봉입한 전구
- (ii) 산화제와 혼합된 하나나 그 이상의 금속 가루(예: 지르코늄)로 구성된 구(球) 모양의 페이스트(paste)를 전극에 연결시킨 전구

(2) 플래쉬큐브(flashcube)

이것은 네 개의 섬광전구와 네 개의 반사경을 가진 큐브(cube)형의 기구이다. 큐브 내의 각 전구는 전기적 방법이나 폭발성 물질의 충격에 의한 기계적 방법으로 차례로 점화한다.

(3) 배터리식 섬광램프(battery flashlamp)

이것은 전지나 전기식점화의 섬광전구나 섬광 큐브(cube)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사진기의 셔터와 연동하여 작동한다.

방전램프를 사용하는 기구는 앞에서 설명한 기구보다 일층 복잡하다. 이 기구는 단일한 유닛으로서 조립되어 있는지나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보통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 (A) 주 기구(mains)로서 전지나 축전지로 작동되는 전기신호발생기 : 이것은 콘덴서(축전기)의 충전과 방전의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것으로서, 보통 사진기의 셔터에 결합된 싱크로나이저(synchroniser)에 의하여 조절한다. 어떤 형의 것에는 섬광의 강도와 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 (B) 스탠드와 반사경을 갖춘 방전램프

(C) 컨트롤 램프(control lamp)

(D) 예비의 섬광전구를 접속시키기 위한 소켓

전기신호발생기로 섬광전구의 스탠드와 반사경이 없는 방진기구 외에 섬광방출장치와 경우에 따라 섬광의 강도와 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로 구성된 것은 완전한 기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불완전한(incomplete) 기기로서 이 호로 분류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진기 몸체 ; 주름통 ; 볼식 마운팅 헤드나 소켓식 마운팅 헤드 ; 셔터와 조리개 ; 셔터[지연 작동식(delayed action)을 포함한다] 릴리즈 ; 건판용 매거진이나 필름용의 매거진 ; 렌즈 후드 ; 사진기가 부착된 법정 사진촬영용 특수 스탠드나 받침대[이러한 것들은 종종 방진램프와 사진기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트 마스트(calibrated mast)를 포함한다].

한편,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9620호)**.

*
* *

이 호에는 사진으로 영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장치를 갖춘 기기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예: 망원경 · 현미경 · 분광사진기 ·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리하여 제시된 사진기는 그것이 다른 기기[망원경 · 현미경 · 분광사진기 · 사진식 세오돌라이트(photo-theodolite) ·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등]의 전용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망판(halftone)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경우에 따라서 **제3705호 · 제9001호 · 제9002호** 등)
- (b) 사진식 복사기나 열식 복사기(**제8443호**)
- (c) 디지털 카메라(**제8525호**)
- (d) 디지털 카메라 백(back)(**제8529호**)
- (e) 전기식 섬광방전램프(**제8539호**)
- (f) **제9008호**의 사진 확대기와 사진축소기
- (g) 일렉트론 회절기기(electron diffraction apparatus)(**제9012호**)
- (h) 사진용 거리측정기(**제9015호**) · 노출계(**제9027호**)(사진기에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ij) X-선회절용 사진기(결정분석용X-선 장치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 방사선 사진장치(**제9022호**)

90.07 -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9007.10 - 촬영기
- 9007.20 - 영사기
 - 부분품과 부속품
- 9007.91 -- 촬영기용
- 9007.92 -- 영사기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영화용 촬영기(cinematographic camera)**(영화용의 사진기를 포함한다) : 촬영기의 원리는 제9006호의 사진기와 유사하나 특히 일련의 사진을 고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 (B) **영화용 촬영기** : 동일 필름에 영상(image)과 음성을 같이 기록하는 것
- (C) **영사기** : 영화의 다이아스코픽(diascopic)식 영사용의 정지형이나 휴대형의 기기이다(동일한 필름에서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영사기는 광원·반사경·집광 렌즈·영사렌즈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투영기는 일반적으로 몰타 십자(Maltese cross)장치로 구성되는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 기구에 의하여 필름을 그 촬영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간헐적으로 광학장치를 통과되도록 인출시켜, 필름이 영사 창을 통하여 이동될 때에 광원이 차단된다. 영사기의 광원으로는 보통 전기식 아아크(arc) 램프를 사용하나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영사기는 필름을 되감는 장치와 팬(fan)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어떤 투영기는 냉각수에 의한 냉각기기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 호에는 특수형의 영사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사진에 촬영된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배율로 광학적 평면 위에 투영되는 영사기로서, 화면은 한 프레임(frame)마다나 매초의 프레임(frame) 수를 변화시켜 연속적으로 관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필름편집용으로 특수 설계된 “애니메이티드(animated)” 뷰어(viewe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0호).

영사기는 광전(光電)식의 사운드헤드(sound-head)와 전하결합소자(charge-coupled device)를 갖춘 **음성기록기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상업용 필름용 사운드 트랙은 이중포맷(예: 아날로그와 디지털)으로 인쇄되어 있다. 디지털 포맷 사운드 트랙이 스프로킷(sprocket) 구멍 바깥쪽인 필름의 가장자리나 스프로킷 구멍 사이에 인쇄하지만 아날로그 포맷 사운드 트랙은 프레임(frame)과 스프로킷 구멍 사이에 인쇄한다. 어떤 상업용 필름은 필름의 가장자리에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이 인쇄되어 있고 디지털은 시간코드 정보만이 인쇄되어 있는데 디지털 사운드 트랙은 필름 상에 인쇄되어 있지 않고 CD-ROM에 별도로 인쇄되어 있다. 필름이 판독기를 통과할 때 광전식 사운드헤드(sound-head)는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을 읽는 반면 전하결합소자는 디지털 사운드 트랙을 읽거나 투사된 동영상과 함께 CD-ROM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동시성(同時性)성을 유지하도록 시간코드 정보를 읽는다. 이중포맷 사운드 트랙으로 인쇄하면 이중포맷 중 하나가 손상되거나 소리재생기기가 이중포맷 판독 기능이 없을 경우에도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다른 영사기는 광전식(photoelectric)이나 자석식(magnetic)의 사운드헤드(sound-head)를 갖추거나(사운드 트랙의 녹음방식에 의한다) 이 두 가지의 형태를 함께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영화용 촬영기 등은 산업용 필름을 사용하는지, 아마추어가 사용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특수형의 촬영기 등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에 부착토록 설계된 카메라(항공사진 촬영용) ; 잠수사진 촬영용의 방수카메라 ; 컬러용 · 입체사진용(stereoscopic) · 파노라마식 사진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이다.

광학 부분품이 없이 제시되는 영화용 기기는 이 호로 분류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이 호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사진기 몸체와 스탠드 ; 볼식 마운팅 헤드나 소켓식 마운팅 헤드 ; 모터의 잡음 제거용 케이싱[“소음차단기 (blimp)”](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은 **제외하여 제5911호**에 분류한다) ; 휴대용 영사기의 케이스로서 영사용 스탠드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 ; 필름청정기(이화학용의 것을 **제외하며**, 제9010호에 분류한다) ; 다층 필름회전 스펀지(영사기에 필름을 공급하고 되감는 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다)

한편,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9620호)**.

*
* *

영화식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장비를 갖춘 기기[예: 현미경 ·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에 관하여는 **제9006호** 해설의 해당부분을 참조할 것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84류**의 권양(捲揚 : lifting)용이나 취급(handling)용의 기기[예: 사진기의 이동식 대(dolly)]
- (b) 마이크로폰 · 확성기 · 가청주파증폭기(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였고 그 필수 불가결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제8518호)**)
- (c) 음성의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와 텔레비전 영상과 음성의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제8519호**나 **제8521호**)
- (d) 광전식 사운드헤드(photoelectric sound-head)(**제8522호**)
- (e) 텔레비전 카메라(**제8525호**)
- (f) 비디오 영사기(**제8528호**)
- (g) 영화 현상실용 기기와 장비[예: 스플라이서(splicer) · 편집 데스크 등](**제9010호**)
- (h) 완구용 영사기(**제9503호**)

90.08 - 투영기 ·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 투영기 · 확대기와 축소기

9008.90 - 부분품과 부속품

- (A) 앞 호의 기기는 스크린 위에 활동하는 영상을 확대 투영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호의 투영기는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의 것은 **슬라이드 투영기(diascope)**로서, 이것은 투명체(슬라이드나 투명화)의 영상을 투영하는데 사용한다. 집광렌즈와 영사렌즈의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는 것인데, 최초의 렌즈, 즉 집광렌즈는 영사렌즈로 불리는 제2의 렌즈 위에 광원의 상을 형성시킨다. 투명체는 영사렌즈에 의하여 스크린 위에 그 상이 투영되도록 두 개의 렌즈 사이에 놓여 있다. 강한 광원을 사용하며 광원으로 부터의 빛을 반사경에 의하여 집중시킨다. 슬라이드는 수동이나 반자동(전자식에 의한 것이나 조작자의 모터조정에 의한 것)이나 자동(타이머에 의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어떤 다이아스코프(diascope)[오버헤드(overhead) 투영기]는 투명한 포지티브필름(positive film) 위에 썼거나 인쇄된 원문을 영사하기 위한 대형의 영사면을 갖는다.

에피스코프(episcope)는 밝게 비추이는 불투명체의 확대된 영상(image)을 스크린 위에 투영시키도록 설계된 투영기이다. 광원이 물체의 표면 위에 직사되어, 그 표면으로부터의 반사광이 렌즈를 통하여 스크린에 투사된다.

에피다이아스코프(epidiascope)는 다이아스코프나 에피스코프로 겸용될 수 있는 투영기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학교 · 강당 등에서 사용하는 슬라이드 투영기와 그 밖의 정지영상 투영기 ; 분광 투영기 ; 방사선사진 투영용 기기 ; 마이크로필름(microfilm) · 마이크로피체(microfiche) · 그 밖의 마이크로폼(microform)의 확대판독기(문서의 사진 복사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용의 플레이트(plate)와 실린더의 제조에 사용하는 투영기기.

이 호에는 또한 슬라이드의 확대된 영상이 투영되도록 조그만 스크린이 결합되어 있는 투영기를 포함한다.

- (B) 이 호에는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도 포함한다(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러한 것은 보통 광원 · 산광용 스크린이나 집광용 렌즈 · 네거티브홀더(negative holder) · 초점조절장치를 갖춘 한 개나 수개의 대물경(때로는 자동식의 것) · 감광지 지지용(支持用)의 가대(easel)로 구성되며 ; 이러한 부분품은 수평이나 수직의 조정지지대에 장착되어 있다.

인쇄공업에서 인쇄용 플레이트(plate)나 실린더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도 이 호로 분류한다.

*
* *

위에 언급한 기기는 광학용 부분품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광학소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 **제9001호**나 **제9002호**).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보디(body)·프레임(frame)과 서포트(support)·확대기의 마스킹프레임(masking frame)과 마이크로필름(microfilm) 공급기나 마이크로피체(microfiche) 공급기를 포함한다.

*
* *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망판(網版)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경우에 따라서 **제3705호**·**제9001호**·**제9002호** 등)
- (b) 광학적 기기를 갖춘 마이크로필름(microfilm)용 사진식 복사기(작은 유리로 만든 영상 위치를 정하는 스크린을 갖춘 것)(**제8443호**)
- (c)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는 기기(투영 마스크 조정)(**제8486호**)
- (d) 프로젝터·프로젝션 패널(projection panel)·디스플레이 유닛(display unit)·모니터(**제8528호**)
- (e) 영화용의 축소기와 확대기(예를 들면, 오리지널 필름과 서로 다른 사이즈의 복사 필름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것)(**제9010호**)
- (f) 영상투영장치를 갖춘 복합식의 광학현미경(**제9011호**)
- (g) 한 개의 확대렌즈를 갖추고 있으며 사진슬라이드의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슬라이드 뷰어(slide viewers)(**제9013호**)
- (h) 사진측량용의 왜곡수정(distortion-correcting)기[“회복기(restitution)”](**제9015호**)
- (ij) 윤곽 투영기(**제9031호**)
- (k) 완구용의 매직 랜턴(magic lantern)(**제9503호**)

[90.09]

**90.10 -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 9010.1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 9010.50 -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 9010.60 - 영사용 스크린
- 9010.90 - 부분품과 부속품

**(I)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롤 모양의 사진용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나 롤 모양의 인화지에 현상된 사진용 필름을 노출시키기 위한 자동화 기계**
- (B) **특수필름현상 탱크** : 금속·플라스틱·석(石) 등으로 만든 것이 있으며 ; 일반적으로 지지봉·필름을 배스(bath) 등으로부터 옮기는 바스켓(basket) 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 중에는 필름의 정착·세척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
- (C) **특수현상용 트레이(tray)**[플라스틱·스테인리스강·에나멜철판 등으로 만든 것] : 명백히 사진작업에 전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목적에도 사용하는 것(예: 일반적으로 실험실이나 병원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D) **네거티브(negative) 세척용의 탱크**(회전식 세척 장치를 포함한다)
- (E) **인화지 건조기·윤택내는 기기·건조윤택 기기**(일면식·이면식·회전식 등) ; **건조기**(수동식 등) ; 건조기용의 롤러 ; 스테인리스강의 연마된 판(plate)이나 크로뮴도금을 한 판으로서 건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건조기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있다)
- (F) 밀착식 인화용의 **인화프레임(printing frame)**[**진공식 인화 프레임(frame)**을 포함하며, 금속제나 금속과 목재로 되어 있다] ; **인화기**(직업용이나 아마추어 사진사용 등의 것) ; 현상액 없이 노광만을 하는 **조명프레임(illuminated frame)**
- (G) **필름 절단기기** : 사진(영화 포함)작업실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
- (H) 네거티브(negative) 수정용의 **특수 지지프레임(holding frame)**

(IJ) 사진용 드라이 마운팅 프레스(dry-mounting press)

(K) 영화제작소에서 사용하는 특수기기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1) 필름현상기 :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 (2) 필름절단기(예: 35mm필름을 두 개의 16mm필름으로 절단하는 것)
- (3) 인화기와 영화용의 축소기(reducer)와 확대기(enlarger)[광학인화기(optical printer)]
- (4) 광학적 효과를 내는 기계(optical effects machine)
- (5) 사운드필름(sound film)의 편집용과 동기용(同期)의 음성제어장치
- (6) 필름상의 사운드트랙의 영상을 서서히 내리며 확대시켜 종이 테이프위에 재생시키는 기록용 장치(영상과 음성을 일치시키는 것과 재녹음용에 사용한다)
- (7) 필름 청정기 ; 사용하여 헤어진 네거티브필름(negative film)을 다시 프린트하기 전에 수정하는 기계 ; 청정기와 수정기를 결합시킨 기계 ; 네거티브필름용 청정기
- (8) 왁싱 기계(waxing machine) : 필름의 측면을 유제로 도포한 양단에 얇은 왁스의 피막을 침전시키는 기계
- (9) 접합기(joiners splicer)(수동식·페달식 등)
- (10) 필름편집기 : 필름 편집기에는 녹화 헤드(picture-head)와 사운드헤드(sound-head)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기계는 예를 들면, 사운드트랙과 화면을 동조(synchronise)시키는데 사용한다.

별도로 제시된 녹화헤드와 동기 테이بل 위에서 프레임 뷰어(frame viewer)와 함께 사용하는 사운드헤드(sound-head)가 장착된 장치도 이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별도로 제시된 사운드헤드는 제외한다(제8522호).

(11) 필름 카피(copy)에 천공(穿孔)으로 번호를 붙이는 기계

(12) 필름을 취급하기 위한 편집용 데스크[이것에는 스푼(spool)식 재권취기(rewinder)가 부착되어 있다]. 네거티브(negative)용의 특수필름 재권취기(再卷取機)(예: 프린팅한 후에) ; 필름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필름측정기 및 푸티지(footage) 계수기(분리하여 제시된 계수기구는 제외한다. 제9029호 참조)

(13) 필름에 자막을 넣는 장치

(14) 인화된 영화필름을 편집하는데 사용하는 필름 뷰어(film viewer) : 이러한 필름 뷰어는 음성녹음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L) 정지 영상용 필름 뷰어 : 사진작업실에서 네거티브(negative) 사진을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M) 복제 작업에 사용하는 특수 장치(제8443호의 사진식복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 예를 들면, 암모니아 증기법으로 감광지를 특별히 현상하는 장치

(Ⅱ)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는 주로 의료용의 방사선 사진이나 X선사진 검사에 사용한다. 네가토스코프는 벽 부착식의 라이트박스(light box)로부터 자동식으로 매거진이 공급되는 방사선 뷰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Ⅲ) 영사용 스크린

이러한 스크린은 영화관·학교·강당 등에서 사용한다. 여기에는 입체 영화용의 도포한 스크린이 포함되며, 또한 휴대용 스크린으로서 감아서 씌우개에 넣은 것과 상자에 넣은 것(삼각대에 장치한 것·테이블에 부착한 것·천장에 걸어 매는 방식의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백색·은색을 도포한 직물이나 유리의 알갱이(microsphere)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제의 시트로 된 것이 많으며 ; 이러한 직물이나 시트(sheet)에는 일반적으로 세공이 뚫려져 있다. 다만, 이 호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히(clearly)** 영사용의 것으로 **인정**(예를 들면, 가장자리·작은 구멍 등에 의하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사진용(영화용의 것 포함) 무대장치[예: 조명장치·반사기·스포트라이트(spotlight)·여러 가지 전구류·음향효과장치·마이크로폰 붐(microphone boom)·배경 등]; 이러한 것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b) 망판(網版)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경우에 따라서 **제3705호·제9001호·제9002호** 등)
- (c) 여러 가지의 종이나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 (d)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drawing)하는 기기(**제8486호**)
- (e) 확성기·마이크로폰(microphone)·가청주파증폭기(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거나 이 호의 기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제8518호**)
- (f) 문서수록용의 사진기[마이크로필름(microfilm)·마이크로피체(microfiche)·그 밖의 마이크로폼(microform)용의 것으로 한정한다](**제9006호**)
- (g) 엑스선용의 형광이나 증강(intensifying) 스크린(**제9022호**)
- (h) 노출계산반과 노출계산척(**제9017호**) ; 노출계·광도계·농도계·색온도계(**제9027호**)
- (ij) 프린트에 번호를 붙이는 수동식 스탬프(**제9611호**)

90.11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 - 입체현미경

9011.2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9011.80 - 그 밖의 현미경

9011.90 - 부분품과 부속품

제9013호의 확대경(magnifier)은 그 배율이 비교적 얇은 일단계의 확대뿐인데 반하여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compound optical microscope)은 보통 다음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I) 광학장치(optical system) : 주로 물체의 확대 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확대 영상을 더 증대시키는 접안경으로 구성된다. 이 광학장치는 또한 외부나 내부의 광원으로 조명되는 거울(mirror)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물체를 비추는 장치와 반사광이 거울에서 그 물체에도 직사되는 집광렌즈를 갖추고 있다.

(II) 시료대(specimen stage) : 한 개나 두 개의 접안경통(현미경이 단안형인가, 쌍안형인가에 따라서)과 대물경통(일반적으로 회전방식)

이 전체는 림(limb)이나 브래킷(bracket)과 여러 가지 조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스탠드에 고정되어 있다.

이 호에는 대중용 · 교사용 · 공업용 ·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을 분류하며 ; 이러한 것은 광학소자(대물경 · 접안경 · 반사경 등)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만능현미경 ; 편광현미경 ; 금속현미경 ; 입체현미경 ; 위상차현미경 ; 반사현미경 · 묘화장치를 갖춘 현미경 ; 시계용의 보석을 검사하는 특수현미경 ; 가열이나 냉각용의 장치를 갖춘 현미경 등을 포함한다.

특수 목적의 현미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선모충현미경(trichinoscope)** : 선모충(旋毛蟲)의 오염이 의심되는 돼지고기의 검사용 투영현미경이다.

(2) **생산 공정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현미경** ; 이러한 현미경에는 보통의 현미경이나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이 있다. 이 기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교 현미경(정밀한 가공품의 표면과 표준품의 표면과를 비교한다) ; 좌표독취용의 현미경(시계 부분품의 위치결정용) ; 공구제작용이나 그 밖의 측정용 현미경[나샷나 · 윤곽 · 기어커터(gear-cutter) · 절삭공구의 치형(齒形 : profile) 등의 검사용] ; 검사하여야 할 물체 위에 직접 놓아서 보는 소형의 휴대식 현미경[브리넬(Brinell) 경도 시험용 · 인쇄용의 형이나 블록 등의 검사용] ; 센터링(centering)현미경[작업하기 전에 공작물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하여 공구 대신으로 공작기계의 축에 부착한다] ; 등

위의 후반부에서 언급한 기기 중 어떤 것(가공된 부분품의 윤곽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투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치는 현미경 두부에 부착시키는 아주 작은 원형의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다.

- (3) **실험실의 측정용 현미경(laboratory measuring microscope)** : 분광사진(spectrogram)의 선 간격 측정용 등이다.
- (4) **외과용 현미경(surgical microscope)** : 외과의사가 신체의 매우 작은 부분을 수술하는데 사용한다. 외과용 현미경의 광원은 독자적인 빛의 경로를 발생시켜 3차원의 화상을 제공한다.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A)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과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현미경** : 이들 현미경은 시료의 육안관찰 외에 확대된 영상(image)의 사진기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진기나 영화촬영기(보통 이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것)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킨 현미경이나 보통의 사진기 혹은 영화촬영기를 간단한 부착물(attachment)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보통의 현미경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마이크로 사진용 사진기나 마이크로 영화용 사진기를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각각 **제9006호**나 **제9007호**).

- (B) **확대장치를 갖춘 마이크로 투영용 현미경** : 이 장치에 결합되어 있는 현미경에 의하여 확대되는 상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투영하는데 사용한다. 초점을 급히 변화시키는 특수 현미경이 장치되어 있으며 교육·과학·의학의 전시실·기술연구실 등에서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현미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스탠드[브래킷(bracket)·대(base) 등]; 접안경 통·회전식 대물경 통(렌즈가 있는지에 상관 없다); 시료 재물대(試料載物臺: specimen stage)[가열용 대(stage)나 냉각용 대를 포함한다]; 시료 유도 장치; 영상묘화용 광학식 부속장치; 조리개 조절 레버; 등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유리로 만든 시료용 슬라이드나 커버(**제7017호**)
- (b) 안과용의 쌍안경형 현미경(**제9018호**)
- (c) 현미경 학습용으로 조제된 슬라이드(**제9023호**)
- (d) 마이크로톰(microtome); 굴절계(**제9027호**)
- (e) 윤곽투영기와 기계부품 검사용의 광학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현미경이나 마이크로투영장치가 아닌 것 [예: 광학식 비교측정기·측정용 벤치(bench) 등](**제9031호**)

90.12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1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 광선 대신에 전자의 빔(beam)을 사용하는 점에서 광학현미경과는 다르다.

전자현미경의 표준형은 다음의 장치가 일체로서 동일 프레임(frame)에 내장되어 조립된 것이다.

- (1) 전자를 방출하고 가속하는 장치[전자총(electron gun)으로 불린다]
- (2) 정전(靜電)식이나 전자(電磁)식의 “렌즈(lens)”[전류를 이송하는 대전판(帶電版)이나 코일]로 구성되는 장치(보통 현미경의 광학장치부분품을 작동하는 것) ; 이들은 집광기·대물경·투영기로서 작용한다. 또한 대물경과 투영기 사이에 소위 필드 “렌즈”(field lens)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더 있으며, 이것은 주사되는 대물의 위치를 변경시키지 않고 확대한도가 변화되도록 해 준다.
- (3) 시료재물대(試料載物臺)
- (4) 전자관 내에 진공을 유지시키는 진공펌프 ; 이것은 때때로 기기에 연결시키는 유닛이 갖추어져 있다.
- (5) 영상(image)을 형광스크린에 반영시켜 육안으로 관측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한 기구
- (6) 전자 빔(electron beam)을 제어하거나 조정해 주는 장치를 받쳐주는 주는 제어대와 페널

이 호에는 스캐닝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매우 정교한 전자의 빔(beam)이 반복적으로 시료의 여러 지점에 직사한다. 정보는 예를 들면, 전송된 전자, 방출된 보조전자나 광학선에 의한 계측으로 얻는다. 그 결과가 모니터 스크린 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모니터 스크린은 현미경과 결합될 수 있다.

전자현미경은 순수과학분야(생물학이나 의학의 연구·물질의 조성의 구명 등)와 공업적 분야[연무(煙霧)·먼지·섬유·콜로이드(colloid) 등의 시험 ; 금속이나 종이 등의 구조의 검사 등]에서 널리 사용한다.

(B) 양성자현미경(proton microscope) : 이것은 전자 대신으로 전자보다 파장이 40배나 짧은 양성자(proton)를 이용한 것이다. 이리하여 상당히 큰 분해 능력이 얻어지며 영상(image)보다 일층 확대되어 보인다.

양자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는 전자현미경과 큰 차이가 없지만 ; 다만, 전자총이 양성자총으로 바뀌어지며 발생원으로는 수소를 사용한다.

(C) 전자 회절기기(electron diffraction apparatus) : 전자 빔(beam)을 시료에 직사시킴으로써 회절상이 나타나며 그 상은 사진으로 찍힌다. 검사되는 시료 결정(結晶)의 크기·방향·원자배열은 그 회절상(diffraction pattern)의 링(ring)의 직경·강도·선명도로부터 산정될 수 있다.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는 주로 부식·유희·촉매반응 등의 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리에 있어서 전자현미경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같은 요소[전자총·음극선관·전자(電磁) 코일·시료홀더(specimen holder) 등]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전자현미경 중에는 회절용 챔버(diffraction chamber)를 갖춘 것이 있으며 따라서 두 가지의 기능(육안에 의한 관찰과 회절상을 얻는 것)을 수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 *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현미경(광학현미경은 제외한다)이나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에 전용(專用)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프레임(frame)과 그 구성 챔버(chamber)와 시료재물대(試料載物臺: specimen stage)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진공펌프(제8414호)·전기기기(배터리·정류기 등)(제85류)·전기식 계측기기[전압계(voltmeter)·밀리암페어계(milliammeter) 등](제9030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90.13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가(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9013.2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9013.80 - 그 밖의 기기

9013.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5호에 의하여 광학식 측정용 기기나 시험용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9031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굴절망원경 중의 일부를 제9005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광학기기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류의 다른 호(특히 **제9015호·제9018호·제9027호**)에도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레이저기기(laser)** :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 m)에서 1mm(10^{-3} 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레이저용 매체(예: 결정·가스·액체·화학제품)가 전기에너지원에서의 빛이나 다른 에너지원에서의 반작용에 의하여 여기(勵起 : excitation)되면, 레이저용 매체의 내부에서 발진한 광속(光束 : light beam)은 부분적으로 투명한 한쪽 끝에서 간섭성 광속(coherent light beam)[가시(可視)나 불가시(不可視)]이 방출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반사되고 증폭된다.

레이저용 매체·에너지원[펌핑 시스템(pumping system)]·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 레이저 헤드(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파브리-페로(Fabry-Perot) 간섭계·간섭필터·분광기] 외에 보통 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냉각시스템·제어장치·가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스템·액체 레이저기기의 경우에는 염색액을 위한 펌프를 갖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헤드와 동일한 하우징(housing) 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기가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레이저기기는 기계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콤팩트 레이저(compact laser)나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한다(예: 레이저 포인터).

그러나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지지대·피가공물의 송부와 위치결정장치·작업의 진행도의 관측 장치·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의료용 기기·제어용 기기·측정용 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레이저를 결합한 기기도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표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와 같이 분류한다. 제외하는 물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i) 재료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에 의해 절삭 가공하는 것)(예: 금속·유리·도자기·플라스틱)
(제8456호)
- (ii) 레이저 뿔질용·용접용기기(절단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제8515호)**
- (iii) 레이저 빔(beam)에 의한 파이프 레벨(정열)용 수준기(水準器)**(제9015호)**
- (iv) 의료용(예: 레이저 안수술)으로 특별히 사용하는 레이저 기기**(제9018호)**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레이저의 부분품과 부속품(예: 레이저관)도 이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도 크세논 램프(xenon lamp)·아이오딘 램프(iodine lamp)와 수은증기램프**(제8539호)**·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제8541호)**와 레이저 크리스탈(laser crystal)[예: 루비(ruby)]·레이저 미러(laser mirror)와 렌즈**(제9001호나 제9002호)**와 같이 에너지준위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식 섬광 램프는 **포함하지 않는다**.

- (2) **수지식 확대경(hand magnifying glasses and magnifier)**(예: 포켓형·사무용)과 검사경(thread counter)(이러한 확대경은 조명램프가 장착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램프가 확대경의 기능을 증대시킨다면 이 호로 분류할 수 있다) ; 쌍안확대경(일반적으로 지지물 위에)(접안경이 부착되어 있으나 대물경이 부착되지 않아서 **제9011호**의 입체현미경과는 상이하다).
- (3) **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도어아이(door-eye)”** ; 광학장치를 갖춘 이와 유사한 물품
- (4) **굴절식이나 반사식의 무기용 조준기(분리하여 제시된 것)** ; 무기용 광학기기로 무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서 무기에 장착되어 있거나 화기와 함께 제시된 것은 무기와 함께 분류한다**(제93류의 주 제1호라목 참조)**.
- (5)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망원경**(예: 측량 기기의 부분을 구성하는 망원경)이나 제16부의 기계의 부분을 구성하는 망원경
- (6) **산업용 파이버스코프(fibre scope)** : 의료 목적용 파이버스코프(fibrescope)(내시경)는 **제외한다(제9018호)**.
- (7) **입체경(stereoscope)(수동식 입체경을 포함한다)** : 천연색사진 투명양화를 입체적으로 관찰하는데 사용하며, 두 개의 고정렌즈와 레버작동 회전기구(각각의 상호교환 가능한 회전 디스크 위에 세트로 부착된 그림을 바꾸기 위한 것)를 결합한 한 개의 플라스틱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 (8) **만화경(萬華鏡 : kaleidoscope)** : 완구용의 것을 **제외한다(제95류)**.
- (9) 잠수함이나 전차용의 **확대식 잠망경 ; 비확대식 잠망경**(예: 참호용)

- (10) **광학적으로 연마된 테를 붙인 유리로 만든 거울(鏡)로서 기기에 부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예: 어떤 종류의 백미러·굴뚝·하수검사용 거울과 통풍구관찰용 특수 거울)
다만,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백미러나 그 밖의 거울[면도용 거울(shaving mirror)을 포함하며, 확대경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7009호나 제8306호)**.
- (11) **광학라이트빔 신호기** : 광학신호의 장거리 수송용에 사용한다[예: 모스부호(morse code)로].
- (12) **슬라이드 뷰어(slide viewer)** : 한 개의 확대렌즈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진슬라이드 검사용에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90.14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 9014.1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 9014.2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 9014.80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 9014.90 - 부분품과 부속품

(I) 방향(方向) 탐지용 컴퍼스(compass)

이 그룹에는 도보여행자·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용하는 간단한 형태의 것부터 채광·항행 등에 사용하는 특수한 것[마그네틱컴퍼스(magnetic compass)·자이로스코픽컴퍼스(gyroscopic compass)·자이로마그네틱컴퍼스(gyromagnetic compass)·비너클컴퍼스(binnacle compass)·위치 탐지용 컴퍼스 등]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방향(方向) 탐지용 컴퍼스를 포함한다.

(II) 그 밖의 항행용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기[예: 육분의(六分儀)·팔분의(八分儀)·방위나침의 등]

(B) 그 밖의 수로 항행용 측정기기, 예:

- (1) **자동파일럿(자동조종장치)[automatic pilots(Gyro pilot)]** : 회전나침반(gyroscopic compass)의 표시도수에 따라 배의 키를 조절하는 복합장치
- (2) **항로기록장치(course recording apparatus)** : 선박의 항해 중 항로와 항로의 변화를 정확히 기록한다.
- (3) **항행용 경사계(inclinometer)** ; 롤링(rolling)의 측정용
- (4) **측정의(測程儀 : log)** :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명확한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선박의 속도를 지시한다. 현재 이러한 기기는 전부 자동식이다. **스크루(screw)**나 프로펠러(propeller)를 이용하는 것[스크루(screw)는 선측의 유수(流水) 중에 장착되어 갑판 위의 다이얼(dial)에 접촉되어 있다]과 유체의 속도에 따라 압력이 변화되는 **차압의 원리**에 의하는 것[일반적으로 피토크관(Pitot tube)을 사용한다]이 있으며 ; 경과거리와 속도는 선박 위의 눈금판으로 읽는다.

이 호에는 전기회로가 차단되는 도수[예: 측정의(測程儀)의 주기수(周期數)]를 기록하는 계기가 결합된 측정의도 포함한다. 이리하여 선박의 항행거리를 표시한다.

- (5) **측심납(測深鉛 : sounding lead)**[수지식의 것과 윈치(winch)로 조작되는 심해용의 것] : 이 기기는 수심과 해저의 성질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6) **반향측심기(echo sounding instrument)** : 해저에서 돌아오는 가청(可聽) 반향(echo)을 배를 탄 상태에서 매우 감도가 강한 마이크로폰(microphone)을 통하여 탐지하며, 검류계로 읽는다.
- (7) **초음파 측심기(ultrasonic sounding equipment)나 초음파 탐지기(ultrasonic detecting equipment)** : 예를 들면, 잠수함 탐지기[(英) asdic, (美) sonar]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통의 측심(測深) 작업용, 해저지도 제조용, 잠수함·난파선·물고기 떼 등의 탐지용으로 사용한다.

(C) 특수항공용 기기, 예:

- (1) **고도계(altimeter)** : 고도의 단위수로 눈금을 매긴 기압계로서 기압이 고도와 함께 감소 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
- (2) **항공용 속도계(air speed indicator)** : 항공기의 후류(slipstream)의 차압을 측정하고 주변공기와 비례하여 그 속도를 표시한다.
- (3) **상승(climbing)이나 하강(diving) 속도계(speed indicator)** : 차압력계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상승할 때나 하강할 때의 수직방향의 속도를 표시한다.
- (4) **인공수평의(水平儀)[또는 자이로수평의(水平儀)]와 선회경사계(旋回傾斜計 : turning and banking indicator)** : 자이로스코프(gyroscope) 원리를 기반으로 한 기기로서, 전자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항공기의 각도를, 후자는 수직축에 대한 항공기의 각도를 표시한다.
- (5) **마하미터(mach-meter)** : 기체의 속도와 로컬 음속간의 비(比)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 비를 “마하 수(Mach number)”라고 칭한다.
- (6) **가속도계(accelerometer)** : 고속 비행 중의 가속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성력의 최대한(초과해서는 안 된다)을 결정하는 것이다.
- (7) **자동조종장치(automatic pilot)** : 이 기기는 미리 설정된 고도·항로 등에 따라 조종사를 임시적으로 대신하여 항공기의 균형과 비행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주로 직접 조작하거나 보조모터의 제어기구(보통 조종사의 이동을 대신하게 되는 유압모터)의 계기를 읽어서 보조모터의 조작을 동조하게 하는 자동장치(고속자이로스코프)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예: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와 무선원격제어기기(**제8526호**)
- (b) 판토그래프(pantograph)(사도기)와 아이도우그래프(eidograph)[신축 축도기(縮圖器)](항행 중의 항로의 도화기용에 사용한다)(**제9017호**)
- (c) 기압계와 온도계(수중용 가역온도계를 포함한다)(**제9025호**)
- (d) **제9026호**의 압력계·액면계·그 밖의 기기
- (e)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제9029호**)
- (f) **제9030호**의 전류계·전압계·전기적 양측정이나 검사용의 그 밖의 기기
- (g) 선박용 크로노미터(chronometer)와 시간 기록계(time-keeper)(**제91류**)

90.15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기기 · 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 거리측정기

- 9015.10 - 거리측정기
- 9015.2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 9015.30 - 수준기(水準器)
- 9015.40 - 사진측량기기
- 9015.80 - 그 밖의 기기
- 9015.90 - 부분품과 부속품

(I) 측지학 · 지형학 · 측량 · 수준측량에 사용하는 기기

이들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면, 지도제작(지도나 수로도) ; 설계도 작성 ; 삼각측량용 ; 토지면적의 계산용 ; 어떤 수평기준에 따른 고지의 높이 결정용 ; 그리고 건설공사(건물 · 도로 · 댐 · 교량 등) · 채광 · 군사작전 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측량용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광학식이나 광전자식 **경위의(經緯儀 : theodolite)**[버니어 표시식 · 현미경식 · 현수식(wall-stand)형 · 만능형 · 채광(採鑛)형 등] · 광학식이나 광전자식 **시거의(視距儀 : tachymeter)**[타코미터(tachometer)] [측거의가 결합된 경위의(經緯儀 : theodolite)] · **트랜시트(transit) · 자이로 경위의(經緯儀 : gyrotheodolite) · 컴퍼스-경사계(傾斜計)(compass-clinometer) · 측량용이나 포술(砲術 : artillery)용 등의 조준 경사계(傾斜計)(sighting clinometer) 등**
- (2) **광학 수준기(水準器)**[알코올식 · 자동조정(autoset)식 · 망원경식 · 시준기(視準機 : collimator)식 · 레이저식 등] : 일반적으로 삼각대에 장착시켜 사용한다.
- (3) **조준의(照準儀 : alidade)**(망원경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광구(光矩 : optical square)와 직각기(cross-staff)**(프리즘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팬텀미터(pantometer)**(조척용 망원경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경사계(cclinometer)**[시준기(collimator)나 조척용 망원경을 갖춘 것](경사도와 경사면 측정용) · **광부용 다이얼(mining dial) · 측각기 · 삼각측량용 헬리오스타트(heliostat) 등**
- (4) **평판(plane table) · 토지측량사슬(land chain) · 그 밖의 특수측량용 기구**[맞춤형 특수줄자 · 수직 경도용 권양기(捲揚機)형 자 등을 포함한다] · 측량 피켓(picket)이나 측량 대(pole)(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금속 · 목재 등으로 만든 것) · 수준조척(쉽게 직접 읽을 수 있는 방식 · 망원경식 · 접는식 등) · 전자석식 거리측정기기(EDM : electromagnetic distance measuring)용 반사프리즘과 대(pole)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제8526호)
- (b) 스틸밴드(steel band) · 방수테이프 등으로 구성된 측정기와 이와 유사한 길이 측정용 장치(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제9017호)
- (c) 적산(積算)회전계 · 주행거리계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9호)
- (d) 건물과 건설 작업에서 사용하는 수준기(水準器)[기포(air bubble)식 등](예: 석공 · 목공 · 기계공이 사용하는 것)와 다립줄(plumb-line)(제9031호)

(II) 사진측량기기

주로 지형학·고고학 등의 지도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며, 또한 조류(潮流)·큰 너울 파도 등의 연구에도 사용한다. 지도 등은 적정 거리로 떨어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작도된 후 (영상이나 사진에서 목표물의 지형 등의 윤곽·크기·좌표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복원(restituted)”한다.

이 기구는 주로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 (1) **“정립(正立)”장치** : 주로 투영기(광원을 갖춘 것)·네거티브 캐리어(negative carrier)·대물경·투영 테이블로 구성된다. 이 장치로 축척을 변화시키며, 또한 원근 등의 지형의 변화에 의한 오차를 포함한 항공사진의 네거티브(negative)를 사진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 (2) **복원장치(restitution apparatus)[스테레오 제도기(stereoplotting apparatus)나 복사측각기** : 스테레오토그래프(stereotopograph)·스테레오플래니그래프(stereoplanigraph)·“오토그래프(autograph)”·스테레오플로터(stereoplotter)·스테레오컴퍼레이터(stereocomparator)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것은 지도나 플랜을 구성하는 단층촬영 상의 세 부명세와 등고선의 작도에 사용하는 복합기구이며 이 작동은 일반적으로 별도 계산을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3) **복원장치에 사용하는 좌표독취기(co-ordinatograph)** ; 이것은 지도를 지지(支持)하고 스테레오토그래프(stereotopograph)나 스테레오플래니그래프(stereoplanigraph)의 지시를 따라 펜이 움직여 작용된다.
- (4) **분석입체측정시스템(analytical stereomeasuring system)** : 광기계적 기기(사진 측량적으로 조작)와 프로그램된 계산기로 구성된다. 이들 시스템은 사진이나 디지털 화상의 시각적·분석적 진단에 사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항공측량용 사진기(제9006호)와 사진측량용기기로는 적합하지 않은 좌표도화기(co-ordinatograph)(제9017호)를 제외한다.

(III) 수로측량기기(hydrographic instruments)

수로측량법(hydrography)이란 수로·수심·조위(潮位) 등에 관한 과학적 표시와 작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는 전항의 것과 동일하다.

(IV) 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

- (1) **특별한 수위용 기록계(special level recorder)** : 호수나 하천의 수위의 변동을 기록한다. 주로 부표와 기록계로 되어 있다.
- (2) **버킷휠(bucket-wheel) 유속계와 유속측정용의 패들 휠(paddle-wheel)** : 하천·운하 등의 유속을 측정한다.
- (3) **파도(swell)나 조류(tide)의 기록계**

다만, (VI)의 (1)과 (2)항에 열거한 기기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작용하는 공업용 기기[예: 액면계(液面計)·유량계(flow meter) 등]는 제외한다(제9026호).

(V) 기상관측기기(meteorological instruments)

이 그룹에는 온도계·기압계·습도계·건습구 습도계와 이러한 기기를 결합한 것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025호).

다만,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풍향계(wind direction indicator)** : 눈금판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풍속계(anemometer)** : 즉, 풍속을 측정하는 기상관측기기이며 두 가지의 형이 있다. 그 하나는 세 개의 컵형의 날을 수직축에 장착시킨 로터(rotor)로 구성되며 카운터로 읽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의 것으로서 풍향계를 관에 부착시켜 그 속에 있는 풍압을 풍속으로 눈금을 매긴 차압력계로 측정하는 종류의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풍속계** 중 발전기에 의하여 변화하는 전류를 발생시켜 이를 풍속단위의 눈금을 전압계로 표시하도록 하는 풍속계를 포함한다.

개내·터널·굴뚝·로(爐 : furnace)·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통기공 내의 통기속도를 측정하는 통기속도계(anemometer)[특수형의 팬(fan)과 다이얼(dial)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26호)**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3) **증발계(evaporation meter)**[피체(Piche)식·증발 저울(天秤 : balance)식 등]
- (4) **일사(日射)기록장치(sunshine recorder)**(유리구식·감광지식 등)
- (5) **측운기(nephoscope)** : 구름의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 (6) **실로미터(ceilometer)** : 지구위에 떠 있는 구름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강한 광빔 (beam of light)에 구름과 만나는 지역에서 형성된 광 초점의 각도 높이로 표시되며, 구름높이는 삼각측량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산한다.
- (7) **시정계(視程計 : visibility meter)** : 기상시정(視程)이나 빛을 이동하는 공기 용량의 측정에 사용한다.
- (8) **우량계(雨量計)** : 특정 장소에 내린 우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가장 간단한 형의 것은 빗물을 모으는 용기에 직경이 고정된 깔때기(funnel)로 구성되며, 빗물은 눈금이 매겨진 관(calibrated tube)으로 측정한다.
- (9) **화학광량계(actinometer)·태양계(solarimeter)·일조계(pyrheliometer)** : 태양광선의 강도나 천체로부터 받는 복사선의 총량을 측정한다.

다만, 이 호에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단순한 온도계나 부합온도계(제9025호)는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10) **고층기상탐측용기기(aerological sounding apparatus)**[라디오존대(radio-sonde)나 무선 풍향(radio-wind)기기] : 기구나 낙하산에 매달려 떠운다. 대기상층 탐측용의 기기(온도계·압력계·습도계)와 이러한 기기의 관측치를 지상에서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무선송신기와 결합시킨 기기이다. 기구와 낙하산이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제88류)**.
- (11) **경위의(經緯儀 : theodolite)** : 기상탐측용 기구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VI) 지구물리학용 기기(geophysical instruments)

예를 들면, 가스·슬러지(sludge)·토양의 분석 장치, 형광광도계(무수한 물질을 탐지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자외선을 이용하는 기기)(제9027호) ; 전기식이나 전자(電子)식의 측정기기[예: 저항측정용 기기·방사능 계산계·열전쌍(thermocouple) 기기](제9030호) 등 많은 지구물리학용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다음의 것이 이 호로 분류한다.

- (1) **지진계(seismometer and seismograph)** : 지각(地殼) 위의 어느 지점의 진동의 시각·지속시간·강도를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지진계(seismometer and seismograph)로서 지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동시에 광유(mineral oil)의 시굴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러한 기기에서 지진이나 폭발의 폭발로 생긴 지진파동은 전기충격으로 변환한다.
- (2) **광택·석유 등의 탐지용의 자력식(magnetic)이나 중력식(gravimetric)의 기기** : 이들 고감도의 기기에는 자기저울·자기경위의(磁氣經緯儀 : magnetic theodolite)·중력계·토션밸런스(torsion balance) 등을 포함한다.
- (3) **전자식 경도 측정기(electronic magnetic gradiometer)** : 또한 프로톤(proton) 자기력계(磁氣力計 : magnetometer)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 자기장의 경사도를 측정한다.
- (4) **주위 음파 스캐닝 기구(circumferential acoustic scanning tool)** : 기구의 머리 부분에 있는 회전하는 송수파기(送受波機 : transducer)에서 발산되는 초음파 신호의 음파 여행 시간을 측정하여 시추공의 영상을 생산한다.
- (5) **시추공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기**

(VII) 거리측정기(rangefinder)

이 그룹에는 기기와 목표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모든 종류의 광학식이나 광전자식 측거의(測距儀 : rangefinder)를 포함한다. 이들은 측량·사진·영화·군사목적 등에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랜드체인(land chain)용 애로우(arrow)가 있다 ;

한편,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호의 기구나 기기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더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620호).

90.16 -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감량(感量 : sensitivity)이 50mg 이하의 것이라면** 전자저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저울(balance)을 포함한다. 추가 이러한 저울과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다만, 추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3호)**.

이 호로 분류하는 저울은 대부분 정밀측정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내식성(耐蝕性)의 금속이나 경합금으로 만든 나이프 에지(knife-edge) · 베어링(bearing) · 마노(瑪瑙)반(planes of agate)이 부착되어 있다. 외기류(air current)나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봉해져 있거나 대부분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캐비닛에 들어 넣어져 있으며 ; 핸들과 그 밖의 기구로 캐비닛의 외부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학장치(예: 확대렌즈)를 갖춘 것 · 눈금을 읽는데 도울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갖춘 것 ·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삼각대 · 조정나사 · 알코올 수준기(水準器) 등]가 갖추어져 있다.

어떤 **토션밸런스(torsion balance)**에서, 측정된 추는 와이어의 토션에 의하여 균형을 맞추게 된다.

어떤 **전자저울**은 진공이나 제어된 압력 하에서 사용하는데, 특수처리(가열 · 냉각 · 가스의 작용 · 진공처리 · 빛으로의 노출 등)를 한 물체의 추의 변화를 기록한다. 추의변화는 자기평형코일을 통과한 전류를 기록하는 것에 의해 측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분석용 저울(analytical balance)**(예: 미량화학저울 · 미량저울 · 비진동분석저울) : 주로 정량화학분석에 사용한다.
- (2) **시금(試金 : assay) 저울** : 귀금속의 시금에 사용한다.
- (3) **귀석(貴石 : precious stone)용 저울** : 캐럿의 등급을 매기는데 사용한다.
- (4) **약제사용 저울(chemists' balance) · 섬유용 저울(yarn balance) · 견본용 저울(samples balance)**(종이 · 직물 등의 중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5) **정역학(靜力學 : hydrostatic)[또는 비중(specific gravity)] 저울** : 액체나 고체의 비중측정에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저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마노(瑪瑙 : agate)로 만든 나이프 에지(knife-edge) 받침 날 · 베어링(bearing) · 반(plane)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도 이 호로 분류한다[예: 중간기둥(beam) · 접시 · 캐비닛 · 눈금판 · 진동제거장치(swing damper) 등].

한편,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호의 장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더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620호)**.

*
* *

감량(感量 : sensitivity)이 50mg을 초과하는 저울은 **제외한다(제8423호)**.

90.17 - 제도용구 · 설계용구 · 계산용구(예: 제도기 · 축소확대기 · 분도기 · 제도세트 · 계산척 · 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9017.20 - 그 밖의 제도용구 · 설계용구 · 계산용구

9017.30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9017.80 - 그 밖의 기기

9017.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제도용구 · 설계용구 · 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a) 그래픽 아트(graphic art)에서 사용하는 미터 박스(mitre box)와 도구[정 · 끌 · 에칭용(etching) 침 등](제82류)

(b) 그래픽 테블릿(graphic tablets)과 디지털타이저(digitizers)(제8471호)

(c) 포토 레지스트(photoresist)가 도포된 기판에 마스크(mask)나 레티클(reticle) 패턴을 제작하는 기기(예: 빛 · E-빔(E-beam) · 집속 이온 빔(focused ion-beam) · X레이 · 레이저 광선 기기)(제8486호)

(d) 사진측량용 좌표도화기(co-ordinatograph)(제9015호)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제도용구(drawing instruments)

(1) **판토그래프(pantograph)(사도기)와 아이도그래프(eidograph)** : 지도 · 설계도 등의 확대 · 축소 · 동일 축척의 복사를 하는데 사용한다. 항행 중의 항로의 도화기(圖化機 : plotting instrument)도 이 호에 포함한다.

(2) **제도기(製圖機)** :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며, 제도판이나 테이블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결합하거나 이러한 기계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제도기(製圖機)를 포함한다.

(3) **제도컴퍼스(drawing compass)** · 디바이더(divider) · 리덕션컴퍼스(reduction compass) · 스프링 컴퍼스(spring bow) · 제도용 펜 · 점선을 긋는 점운(dotting wheel) 등[케이스(예: 제도세트)에 넣어져 있는 것이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직각자 세트**[표준세트 · 해칭용(hatching) 세트 · 목재나 금속용 세트 등] · **조정자 · T자**(표준 T자나 분절T자) · **운형자(雲形- : drwaing curve)** · **자**(평자 · 각자 · 평행자 · 표준자 등)

(5) **각도기(protractor)** : 제도세트의 보통 각도기로부터 예를 들면, 공업용에 사용하는 복잡한 각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6) **스텐실(stencil)**로서 명백히 **제도용구로 전용**된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것 : 전용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스텐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설계용구(marking-out instruments)

[설계(marking-out)이란 기계가공·절단 등을 행할 부분의 표면에 작도선을 표시하는 것이다]

- (1) **빔컴퍼스(beam compass)**(점을 표시하는 것, 목공 등이 사용하는 것 등) : 눈금이나 눈금판을 붙인 것
- (2) **화선기(scriber)와 센터펀치(centre punch)**
- (3) **괘선용이나 평면검사용의 기준평면으로 사용하는 정반·완전한 평면을 갖춘 직자와 직각자[주철제·석(石)제 등]**
- (4) **V-블록과 X-블록** : 원통형의 가공물을 지지(支持 : support)하는 것

이 호에는 일체식의 모터를 갖춘 수작업용 조각 공구를 **제외한다(제8467호)**.

(C) 계산용구(mathematical calculating instruments)

계산척(slide rule)·계산반(disc calculator)·원통형 계산기(cylindrical calculator)·계산척이나 그 밖의 수학적 계산원리를 기초로 하는 그 밖의 계산용구. 예를 들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첩필로 숫자를 움직여서 가산이나 감산을 행하는 포켓형의 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기상 조건·시각·조리개·피사체의 종류·감광유제(sensitivity emulsion)의 조건에 따라 사진촬영의 노출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계산용 자(rule)와 원반도 포함한다.

다만, 계산기(calculating machine)나 회계기(accounting machine)는 **제외한다(제8470호)**.

(D)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for use in the hand)

이들 기기는 물체의 선(line)이나 영상(像)(직선이나 곡선)과 같은 측정할 수 있는 물체의 1차원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기는 길이의 단위(예: mm)로 나타낼 수 있는 직경·깊이·두께·높이와 같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기는 측정하기 위하여 손으로 쥌 수 있는 특징(크기·무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측정하기 위해서 스탠드나 그 밖의 지지구(支持具) 위에 고정 장착하거나, 신축성이 있는 관·케이블 등으로 기계나 그 밖의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한 기기는 **제외한다(제9031호)**.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마이크로미터(micrometer)** ; 마이크로미터(micrometer)식의 헤드를 갖는 것으로 스크류식(screw-type)이나 비스크류식(screwless-type)인지에 상관없다[비스크류식은 슬라이드 액션(slide action)을 갖추고 있으며 보통 전자식(電子式)이다]. 이 기기는 예를 들면, 내경·외경·두께·나사의 간격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측정은 나사 자체·다이얼(dial)·디지털 디스플레이상에 나타난다.
- (2) **캘리퍼스(callipers)**[부척(副尺 : vernier)식·다이얼표시식(dial indicating)·전자식(電子式)] : 직경·깊이·두께의 측정에 사용한다.

- (3) **게이지류(gauge)**(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제거나 각도·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플러그 게이지·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
- (4) **비교측정기(comparator)[다이얼식(dial type)]** : 치수의 내외공차를 검출(예: 수정을 위한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측정봉과 확대기구와 전동장치[치차(齒車 : rack)·기어·레버·스프링·공기식·액체식 등]가 갖추어져 있다.
- (5) **곧은 자(measuring rod)**(눈금이 없는 것이나 눈금을 매긴 것, 직선형이나 접이식의 것)와 **줄자(measuring tape)**[예: 용수철척·리본척(riband-rule)·드럼권척(drum wound band)] : 표준척(standard rod)·측척장(measuring stick)·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측정기[측쇄·수준조척(水準照尺 : levelling stave)·상척(ranging pole) 등]와 갱도(坑道)용의 윈치식(winch-type) 측정기를 **제외한다(제9015호)**.
- (6) **눈금자(divided scale)**(학교용자 등) : 철면체의 직경을 측정하는 V형의 자와 이동크로스헤드를 갖춘 수직형 측정기를 포함한다.
- (7) **지도 측정기(map measurer)[곡선계(opisometer)]** ; 지도·설계도 상의 거리를 측정하는 소형 기기(눈금판을 붙였을 수도 있고 붙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미터 익스텐션 앤빌(micrometer extension anvil) ; 슬립 게이지(slip gauge)용 스탠드 ; 마이크로미터 스탠드·접이식 자(folding rule)에 사용하는 힌지(hinge)나 조인트(joint)

90.18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 심전계

9018.12 --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3 --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4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9018.19 -- 기타

9018.2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 주사기 · 바늘 · 카테터(catheter) · 케놀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9018.32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9018.39 -- 기타

-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018.49 -- 기타

9018.5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9018.90 - 그 밖의 기기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 · 외과의사 · 치과의사 · 수의사 · 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 · 예방용 · 치료용 · 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 · 검시용 · 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II)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소독된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봉합재 · 살균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 라미나리아텐트(laminaria tent)(**제3006호**)

(b)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 · 실험용 시약

(c) **제4014호**의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

(d) **제7017호**의 실험실용 · 화학용 · 위생용의 유리제품

(e)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실내위생용품(특히 **제7324호 · 제7418호 · 제7615호**)

(f) 매니큐어(manicure)용의 세트와 용구(**제8214호**)

(g) 신체장애우용의 차량(**제8713호**)

(h)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것(시력교정용 · 보호용 · 그 밖의 용도인지에 상관없다)(**제9004호**)

- (ij) 사진기(제9006호)(이 호의 기기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 (k) 제9011호나 제9012호의 현미경 등
- (l) 폐기능과 체질량지수 등을 계산하기 위한 제9017호의 계산반(disc calculator)
- (m) 제9019호의 기계요법용 기기·산소흡입기·오존흡입기·인공흡입기·에어졸 치료기·마사지용 등의 기기
- (n) 정형외과용기기·인공 인체 부분과 골절 치료구(동물용의 것을 포함한다)(제9021호)
- (o)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 등(의료용인지에 상관없다)
- (p) 체온계(제9025호)
-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진단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일반적으로 제9027호)
- (r) 내과용 가구나 외과용 가구(수의용 가구를 포함한다)(수술대·검사대·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이 호의 기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등(제9402호)

한편 이 호에는 오로지 직업상 사용하는 특수한 측정용 기기도 분류한다. 예를 들면, 두부(頭部) 측정기(cephalometer)·뇌의 장해측정용 디바이더(divider)·산과용 골반계 등이 있다.

또한 많은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인간이나 수의용)는 실제에 있어 공구[예: 해머·망치·톱·끌·정·겸자(鉗子 : forceps)·집게·압설자(壓舌子 : spatulae) 등]나 칼붙이(가위·나이프·절단기 등)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물품은 특수한 모양을 가진 것, 소독을 위하여 떼어 내기에 용이한 것, 제법이나 그 구성 재료금속의 질이 우수한 것, 포장 등(분만·검시·부인과·눈이나 귀의 수술·수의과의 분만 등의 특별한 치료에 사용하는 기구의 세트가 케이스나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으로 명백히 치료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photon beam) 작용과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

(I)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 예 :

- (1) 침(needle)(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
- (2) 란셋(lancet)(종두접종용·채혈용 등)
- (3) 투관침(套管鍼 : trocar)[천자(穿刺 : puncturing)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쓸개용·일반용 등]
- (4) 모든 종류의 외과용 나이프(knife)와 메스(scalpel)

- (5) **탐침(sound)**(전립선용·방광용·요도용 등)
- (6) **검경(檢鏡 : speculum)**(비경·구강경·후두경·직장경·질경 등)
- (7) **거울과 반사경(mirror and reflector)**(눈·후두·귀 등의 검사용)
- (8) **가위·검자(鉗子 : forceps)·핀셋·집게·끌·정·망치·해머·톱·스크레이퍼(scraper)·압설자(壓舌子 : spatula)**
- (9) **삼입관(cannula)·도뇨관(catheter)·흡인관(suction tube) 등**
- (10) **소작기(燒灼器 : cautery)**(열뜸술·전기뜸술·마이크로뜸술 등)
- (11) **핀셋(tweezers) ; 드레싱(dressing)용·소독면(swab)용·스펀지(sponge)용 및 주사침(needle)용의 홀더(holders)[라듐(radium)침용 홀더를 포함한다]**
- (12) **전인기(retractor)**(입술·악골·복부·편도·간장 등에 사용한다)
- (13) **확장기(dilator)**(후두·요도·식도·자궁 등에 사용한다)
- (14) **와이어 가이드(wire guide) : 카테터(catheter)·바늘·조직 확장기·내시경·혈관성형(atherectomy)기를 배치하는데 사용한다.**
- (15) **클립(clips)(봉합용 등)**
- (16)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유리제·금속제·유리나 금속제·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천자용·마취용·관주용·창상(創傷 : wound)세척용·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안용·이용·인후용·요도용·부인과용 등
- (17) 상처부위를 봉합하기 위하여 스테이플을 삽입하는 **외과용 스테이플러(surgical stapler)**

(B) 특수 진단용 기기(special diagnostic instruments and apparatus)

이 기기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청진기(stethoscope)**
- (2) **호흡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기초대사를 계측한다)
- (3) **혈압계(sphygmomanometer), 표면장력계(tensiometer), 오실로미터(oscillometer)**(혈압 측정용의 것)
- (4) **폐(肺)활량계(spirometer)**[폐(肺 : lung)의 활량을 검사하는 것]
- (5) **두부(頭部) 측정기(cephalometer)**
- (6) **골반계(pelvimeter)**

(C) 안과용 기기. 여러 가지 범위의 것이 여기에 속한다.

- (1) **외과용 기기(surgical instruments) : 예를 들면, 각막원형절제기·각막절개도 등**
- (2) **진단용 기기(diagnostic instruments) : 예를 들면, 검안경 ; 헤드밴드를 갖춘 양안확대경과 쌍안경형 현미경[현미경·슬릿 slit)을 갖춘 전기램프와 헤드레스트(head-rest)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조정가능한 지지물 위에 부착되어 있어서 눈의 검사에 사용한다] ; 안압계(안압검사용) ; 개검기(eye speculum)**

- (3) **시력교정용(orthoptic) 기기나 시력검정용(sight-testing) 기기** : 약시교정경 · 검영법에 사용하는 검안경 · 검영굴절검사기 · 사시계 · 각막계(각막곡률계) · 각막궁률계(角膜穹窿計 : keratoscope) · 동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안측정계량기 · 검안케이스(렌즈) · 검안 프레임(frame)(검안렌즈용) · 안경검정계 · 시력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색깔검사에 사용하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안경검정계와 시력표는 **제외한다(제49류)**.

또한 이 호에는 전기가열식의 안용 압박봉대와 눈으로부터 금속의 소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만든 전자석도 포함한다.

- (D) **청각용 기기(ear instruments)** : 예를 들면, 이경(auriscope). 다만, 소리굽쇠는 의료용 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209호**).

- (E) **마취용기기(anaesthetic apparatus and instrument)**(얼굴마스크 · 안면에 대는 용구 · 기관내관 등)

- (F) **비강(nose) · 인후(throat) · 편도(tonsil)의 치료용 기기** : 검자(鉗子 : clamp)[코연골교정용] ; 투조기(transillumination apparatus)[부비동(sinus)와 콧구멍(nasal fossa)용] ; 편도절제도와 절제기 ; 후두직달경 ; 후두 브러시 등

- (G) **인두(pharyngeal) · 식도(oesophageal) · 위(stomach) · 기관(氣管)절개(tracheotomy)의 치료용 기기** : 식도경 · 기관지경 · 위 펌프 · 기관절개삽입관 등

- (H) **요도용(urinary canal)이나 방광용(bladder)기기** : 요도절개도 · 방광취석용기기 · 방광결석 흡인장치 · 전립선절제용기기

- (I) **인공신장(투석)기기(artificial kidney apparatus)**

- (K) **부인과용이나 산과용기기** : 질경 ; 자궁절제용 기기 ; 산과용 청진기 ; 생식기 검사용 특수 광학기기 ; 검자(鉗子 : forceps) ; 천공기(穿孔機 : perforator) ; 절태용 기기(태아제거용) ; 천두기(cephalotribe)와 쇄두기(碎頭器 : cranioclast)[자궁 내에서 사망한 유아의 두개(頭蓋 : head)를 파쇄하는 기구] ; 내장 검사용 기기 ; 등

- (L) **휴대식 기흉용 기기(portable pneumo-thorax apparatus), 전혈(全血) · 혈액성분 · 혈액유도체용 수혈 기기, 인공 거머리(artificial leech)**

또한 이 호에는 살균된 합성수지로 만든 밀봉용기로서 공기를 뽑아내고 소량의 혈액항응고제를 첨가하고 불가결한 급혈관과 사혈침이 갖추어져 있어 인간의 완전한 혈액의 채집 · 저장 · 운반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유리로 만든 특수한 혈액 저장병은 **제외한다(제7010호)**.

- (M) **수족병 치료 전문의사용 전기 그라인더(chiropractors' electric grinder)**

- (N) **침술용 침(acupuncture needle)(금 · 은 · 철강으로 만든 것)**

- (O) **내시경 · 위경 · 흉강경 · 복막경 · 기관지검사망원경 · 방광경 · 요도경 · 절제용내시경 · 심장경 · 결장경 · 신장경 · 후두경 등**. 이러한 내시경 중 많은 것들은 원격조정기를 통하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다란 작동도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용은 **제외한다(제9013호)**.

- (P) **자동자료처리를 내장한 장치로서 단지 치료방사선의 조사량과 분포(dose and distribution)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 (Q) **고압 산소실(hyperbaric chamber)**[또한 감압실(decompression chamber)로도 알려져 있다] : 특히 높은 대기압력 수준에서 산소를 관리하기 위한 압축용기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감압증 · 공기 색전증 · 가스 괴저(壞疽) · 일산화탄소 중독 · 난치의 골수염 · 피부 이식편과 조직편 · 방사선균병과 회귀혈액감소 빈혈증과 같은 증세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 (R) **램프(lamp)** : 진단 · 탐침 · 방사선요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 제작한다. 펜의 모양을 한 회중전등은 **제외하며(제8513호)**, 내과용이나 외과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그 밖의 램프도 **제외한다(제9405호)**.

(II) 치과용 기기

이 그룹과 이전 그룹의 공통 기기(예: 마스크와 그 밖의 치과용 마취기기)에 추가해서 이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한 기기는 다음과 같다.

- (1) **외과의사용 핑거가드(surgeon's finger-guard)**(연결식의 것은 포함한다)와 **개구기(gags)** ; **볼이나 입술의 색인기(retractor)** · **설압자(tongue depressor)** · **클립(clip)**
- (2) 모든 종류의 **점자(鉗子 : forceps)**(종류에 상관없다) · **골막기자(骨膜起子 : elevator)** · **핀셋(tweezers)**(종류에 상관없다)[노출된 치아 · 유정도치(aligning pivot teeth) 등의 발치용] · **칼붙이(절개용 · 봉대용 · 충전용 · 도려내는데 사용하는 것 등)** · **치근점자(齒根鉗子 : root forceps)**
- (3) **근관치료용기기**[근관침 · 리머(reamer) · 줄(files) · 충전기구(plugger) · 스프레더(spreader) 등]
- (4) **골전도와 줄** ; **악골과 악골동의 절제용 끌과 망치** ; **라스파토리(raspatory)** ; **스칼펠(scalpel)** ; **특수나이프와 가위** ; **치과의사용의 특수한 핀셋** ; **잇속 파내는 기구("excavator")와 탐침**
- (5) **치육(gum)과 치와(socket) 세척용구** ; **치구 소제구(齒垢 掃除具 : scaler for treating dental tartar)** ; **제석자(scraper)와 에나멜 정(釘)**
- (6) **여러 가지 탐침** ; **침[종기(abscess)용 · 피하용 · 봉합용 · 면화용 등]** ; **면화 홀더(cotton-wool holder)와 소독 솜 홀더** ; **흡입기(insufflator)** ; **치과용 거울(dental mirrors)**
- (7) **금충전용구**(충전기구 · 망치 등) ; **치아 충전용구**[시멘트나 수지용 압설자(壓舌子 : spatula) · 아말감(amalgam) 충전기구와 망치 · 아말감 수송기 등] ; **인상재(印像材)용 트레이(impression compound tray)**
- (8) **치과용 버어(dental burr)** · **치과용의 디스크** · **드릴** · **브러시**(치과용 드릴 엔진이나 치과용 핸드피스(handpiece)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이 호에는 치과의사나 치과기술자가 치과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기와 공구류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나이프 ; 압설자(壓舌子 : spatulae) · 그 밖의 조형용 공구 ; 여러 가지 집게와 핀셋[클램프(clamp)와 치관의 고정용 · 피복절단용 등] ; 톱 ; 전단기 ; 망치 ; 줄 ; 끌 ; 삭도 ; 연마공구 ; 금속제 치관의 메탈포오머(metal former)[비팅(beat)에 의해서 제조용으로 사용한다]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치과 캐스팅머신(dental casting machine) · 치과 밀링머신(dental milling machine) · 치과용 트리머(dental trimmer)(틀니 모형을 정돈하는데 사용)를 포함한다. 범용성의 공구나 그 밖의 물품[노(爐) · 주형 · 용접용구 · 용접금속용 국자 등] ;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 (i) **치과용 드릴 엔진(dental drill engine)**[회전암(swivel arm)을 갖춘 것] : 별도의 대(base) 위어나 벽에 장착용의 것이나 아래 (ii)에 열거된 장치에 부착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ii) **대(base) 위의 완성된 치과용 장치**(고정식이나 이동식) :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압축기 · 변압기 · 제어반 · 그 밖의 전기장치를 조합시킨 프레임(frame)이나 ; 다음의 기기를 장착한 경우도 많다. 즉, 회전압드릴(swivel arm drill) · 타구(唾具 : spittoon)와 구강 행구기 · 전열기 · 온풍흡입기 · 분무기 · 소작기명 · 산광 조명기 · 무영램프(無影 : shadowless lamp) · 팬 · 투열성장치(diathermic apparatus) · 엑스선장치 등

치과용의 장치 중에는 드릴 대신에 연마재(보통 산화 알루미늄)를 이용하는 식의 것도 있다. 연마재는 일반적으로 압축가스(예: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이(齒)에 투사한다.

- (iii) **타구(唾具 : spittoon)식 구강 행구는 용기** : 대 위어나 스탠드나 회전암(swivel arm)에 부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온수 공급과 온수주입기가 결합되어 있다.

- (iv) **중합작용장치**(빛이나 열) · 아말가메이터(amalgamator) · 초음파치석제거기 · 전자 수술 장비 등

- (v)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치과 치료용 기기**

- (vi) **치과용 기기나 그 밖의 치과용 기구가 결합된 치과용 의자**는 이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이 호의 치과용 기구와 결합되지 않은 치과용 의자는 **포함되지 않고 제9402호**에 분류한다(조명기구와 같은 장치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ii)항에 열거된 치과용 기구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 예를 들면, 압축기(제8414호) · 엑스선장치(제9022호)이다. 제9022호에는 엑스선장치 등 치과에서 별도의 대에 사용하기 위해서나 벽에 장착하기 위해 설계된 기기도 포함한다. 다만, 투열장치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의 전기의료기기로 분류한다(아래 part(IV) 참조).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충전 재료는 제3006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치과용 왁스(dental wax)”나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s)”[세트의 것 · 소매용 포장의 것 · 판 모양 · 편자(horseshoe) 모양 · 막대(stick) 모양과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플라스틱[소석고(燒石膏)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를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은 제3407호에 분류한다.

(III) 수의용 기기

수의과용에는 다수의 기기가 있으며, 수의과용으로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I)이나 (II)의 것과 유사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 (A) **일반 용도의 기기**[예: 침 · 란셋(lancet) · 투관침(套管鍼 : trocar) · 소도(小刀 : scalpel) · 검경(檢鏡 : specula) · 탐침(sound) · 가위 · 겸자(鉗子 : forceps) · 해머 · 큐렛(curette) · 견인기 · 주사기 등]

- (B) **특수 용도의 기기**[예: 검안경 · 개검기 · 후두경 · 청진기 · 겸자(鉗子 : forceps) · 절태기 등]

- (C) **치아용 기기(dental instruments)**

또한 이 그룹에는 수의용의 특수 기기도 포함한다. 예:

- (1) **유방용 기기** : 유두확장기와 천자개구기(소의 유두용) ; 소의 산욕열(產褥熱 : puerperal fever)이나 유열(乳熱 : milk fever)의 치료용 기기
- (2) **거세용 기기** : 거세기 ; 거세용 클램(clam)과 클램프(clamp)(수컷의 생식선 위축용) ; 거세용 바이스(vice)와 겸자(鉗子 : forceps) ; 난소 절제기 등
- (3) **분만용 기기** : 특수한 조산용의 끈(cord · strap) · 헤드칼라(head-collar) · 겸자(鉗子 : forceps) · 훅(hook) · 기계적 분만보조구 등

(4) **그 밖의(miscellaneous) 기기** : 인공 수정기 ; 꼬리 절단기(tail-docker) ; 뿔 절단기 ; 동물의 호흡기·소화기·비뇨기·생식기 등의 병의 치료용 분무기, 개구기(mouth-gag), 다리 묶는 줄(hobble) 등으로 수술할 때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제어장치 ; 특수한 주사기와 마취제나 약제(항혈청·백신 등)를 예를 들면, 압축가스에 의해 조작하는 총으로 방목동물에 대해 원격투사를 하는 주사기 ; 환약투여용 기구 ; 물약투여용의 작은 재갈 ; 열제(裂蹄 : sand-crack)용의 훅(hook)(팽창증의 갈라진 틈을 다물게 하는 것) ; 병아리의 자웅 감별용의 내시경 등

이 호에는 선모충검사경(trichinoscope)(돼지고기의 검사용 광학기계)(제9011호)·동물용의 정형외과용 기기(제9021호)·동물용 수술대(제9402호의 해설 참조)를 제외한다.

수의사와 편자공(blacksmith)이 사용하는 범용성의 공구는 제82류에 분류한다[예: 토우잉 파일(toeing file) ; 네일 클리퍼(nail clipper)나 후프 클리퍼(hoof clipper) ; 꺾질벗기는 칼 ; 집게 ; 해머 등] ; 또한 제82류에는 가축의 소인도구[편치·발굽의 외피를 조각하는 아이언(iron 등)와 전단기(shearing tool)도 포함한다.

(IV) 신틸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 기기

이것은 신체의 일부를 주사하여 기관의 영상을 생산하거나 기관의 기능을 기록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의료진단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료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신틸레이션 계수기(計數器 : scintillation counter)를 갖춘 기기를 포함한다[예: 감마 카메라(gamma camera)·신틸레이션 스캐너(scintillation scanner)].

(V)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

이 호에는 예방·치료·진단에 사용하는 전기식 의료기기도 분류한다. 다만,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는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기식 진단용 기기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심전계(electro-cardiograph)**(심근의 수축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를 측정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심전도로 기록하는 장치)
- (ii) **심장음기록계(phonocardiograph)**(심장의 소리를 심장음기록도로 기록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 심전계로 사용한다.
- (iii) **심장경(cardioscope)**(심전도와 심장음기록도의 동시 관측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에 설명한 두 개의 계기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 (iv) **전기심장묘사기(rheocardiograph)**(심장의 동작에 의하여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
- (v) **뇌파기록기(electroencephalograph)**(뇌의 검사용)
- (vi) **맥파기록기(electrosphygmograph)**(동맥의 압력과 용적을 기록한다)
- (vii) **혈압측정장치(electrotonograph)**(동맥·정맥·심장내의 압력의 변화를 기록한다)
- (viii) **망막전위기록계(electroretinograph)**[망막의 피로(strain)를 측정한다]

- (ix) **청력계(audiometer)와 이와 유사한 장치**(주파수의 변화에 의하여 청력검사를 한다)
 - (x)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진단장치(diagnostic apparatus)**
(영상자료 등을 처리하고 보여주는 것)
 - (xi) **초음파진단기(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 기관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예: 초음파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튜브에 표시한다).
 - (xii) **핵자기공명(NMR : Nuclear Magnetic Resonance)기** : 원자핵(예: 수소원자)의 자기특성을 이용하여 인체의 내부조직이나 기관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
- (2) **전자요법용 기기(electrotherapy apparatus)** :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 · 신경통 · 반신불수 · 정맥염 · 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 기기 중에는 아래 (7)항의 전기식 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
 - (3) **이온요법용 기기(iono-therapy apparatus)** : 살리실산나트륨이나 살리실산리튬 · 옥화칼륨 · 히스타민 등의 활성의약품을 전기에 의하여 피부를 통하여 흡수시키는 것
 -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diathermy apparatus)**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한다 [예: 류머티즘 · 신경통 · 치(齒)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 · 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전극[예: 판(plate) · 링(ring) · 관(tube) 등]을 이용한다.
 - (5) **전기충격요법용 기기(electric shock treatment apparatus)** : 정신병이나 신경성 질환 치료용의 것
 - (6) **심장 세동제거기(cardiac defibrillator)** : 전류의 작용으로 심장을 제세동(除細動: defibrillating)하기 위한 것
 - (7) **전자의과용 기기(electro-surgical apparatus)** : 이 기기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 · 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lancet)[전기란셋(electric lancet)]으로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데 사용한다. 일부의 결합장치는 페달식의 조작에 의하여 전기식 절단기나 전기응고기로 겸용하도록 되어 있다.
 - (8) **광선치료용 기기(actinotherapy apparatus)** : 이 기기는 가시스펙트럼의 내측이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그 외측(just outside)의 광선(적외선 · 자외선)을 이용하여 어떤 종류의 질병의 치료나 진단(특수한 조명으로 피의 병을 발견한다)에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램프가 갖추어져 있는데 적외선장치에 반사판부의 전열용 항체나 전열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 (9) **인공보육기(artificial incubators for baby)** : 기본적으로 투명한 플라스틱제 큐비클(cubicle) · 전열장치 · 안전과 경보장치 · 산소와 공기의 여과 조절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트롤리(trolley) 위에 부착되었으며 유아용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위에서 설명한 의료전기기에 사용하는 전극이나 그 밖의 기구를 넣은 케이스도 이 그룹에 분류한다.

제8518호에 해당하는 비의료용 태아검진용 청취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18호의 해설 참조)**.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9018.12호

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크기·모양·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설명은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조직을 비디오 영상으로 출력(output)한다.

이 인체 스캐닝(body scanning) 방법은 임산부의 태아를 진료하는데 사용한다. 이 방법은 흉부·심장·간장·담낭을 진료하는데 적합하다.

소호 제9018.13호

자기공명 촬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수소원자 핵이 강한 자기장에 따라서 정렬하는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만일 무선 주파를 수소원자에 보내면 핵의 정렬이 이동한다. 무선파를 중지하면 핵은 스스로 재정렬 하며 이 과정 중에 작은 전기 신호를 낸다. 인체는 원래 수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사된 펄스(pulse)로 신체의 어느 부위나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수소는 수분 함량을 나타내므로 반사 펄스는 조직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골수(bone-marrow)와 조직(tissue)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호의 전기 진료용 자기공명 촬영기기는 거대한 전자석·무선주파 발생기와 분석을 위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외부의 무선주파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강한 자장을 얻기 위하여 전자기를 액체 헬륨으로 과냉각시켜야 한다.

자기공명 영상을 얻기 위하여 인체 내에 풍부하게 있고 자성(磁性)이 뛰어난 수소를 기질로 사용하며, 나트륨·인 같은 다른 원소를 사용하여도 된다.

소호 제9018.14호

이 호의 전기 진료기기는 인체 내의 감마선의 분포에 대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신티그래픽 스캐너(scintigraphic scanner)와 같은 적합한 기기를 이용하며, 감마카메라(gamma camera)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러한 핵 스캐너(nuclear scanner)는 진료 받을 기관이 신속하게 흡수하는 방사선 화합물[트레이서(tracer)]을 환자가 경구용으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 후 방사선 동위원소가 흡수된 곳을 측정하기 위하여 목표기관(예: 뇌)에 침투한 추적자가 내는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는 감마 계수기로 진료한다.

비디오 영상은 추적한 방사선을 분석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만든다. 이 영상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흡수한 조직을 보여주는 명암 부위를 붙인 조각(patchwork)이거나 색조의 콘트라스트(contrast)이다. 이러한 진료(scan)는 관련 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의 예로는 양전자 방출 단층 화상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scanner]가 있다. 이는 컴퓨터 단층 촬영기기[Computed Tomography(CT) scanner]에 이용된 화상 기술과 핵의학 원리를 결합한 것이다(소호 제9022.12호 해설 참조).

90.19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9019.20 -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I) 기계요법용 기기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이나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예: 탄성케이블식의 인장기(引張機 : extender)나 연습기 ; 여러 가지 종류의 스프링 그립(spring grip) ; 노 젓기 운동의 회복용 “로우잉(rowing)”기 ; 트레이닝용이나 다리근력을 발육시키기 위한 고정식 일륜차 등].

기계요법(mechano-therapy)이란 관절 등의 운동에 관련된 치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고정식의 장치(예: 계단·사다리·평행봉 등)인 것은 지체의 갱생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하지 않고**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 포함되는 기기는 스프링·차륜·활차(滑車 : pulley)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구만을 갖춘 것이라 할지라도 기계식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손목(wrist)의 회전운동용 장치
- (2) 손가락의 기능갱생용 장치
- (3) 발(足)의 회전운동용 장치

이들의 세 가지 장치는 대부분 레버에 연결된 손잡이·조정 평형추(平衡錘)·지체를 유지하는 장치·전체를 지지하는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동식이다.

- (4)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굴절 신장시키는 장치
- (5) 동체운동용 장치
- (6) 보행연습용 장치 : 지지용(支持用) 목발(supporting crutch)과 손잡이를 갖춘 프레임(frame)을 차륜에 부착시킨 것
- (7) 순환기능 개선용·심근(心筋) 강화용·하지(下肢)의 기능 회복용 장치 : 프레임(frame)에 부착된 바퀴없는 사이클(cycle)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가 앉거나 누울 때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 (8) 동력식 만능형 장치로서 호환성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기계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것 (예: 목·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허리·무릎 등의 관절이나 근육 질병의 치료용)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 마사지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가 포함한다. 또한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안마하는 수(水) 마사지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의 사례에는 펌프·터빈이나 송풍기(blower)·덕트(duct)·제어장치·모든 부속품으로 제작되어 제시된 스파(spa) 욕조와 흥부를 덮는 형의 내측에 수 개의 소형노즐을 배치하여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를 통해서 도입되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회전시키는 흥부안마용기기도 포함한다.

다음의 것도 이 호의 의미에 속하는 마사지기로 간주한다. 즉, 환자의 체중이 변화를 주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

(Ⅲ)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이 기기는 반사작용의 속도·운동의 협조성·그 밖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의사 등이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특별한 적응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사람(비행사·운전자 등)의 검사, 어린이의 교육적성검사나 직업적성검사에 사용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장치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예: 기계적 적성이나 손의 섬세를 검사하는 장치 ; 항공기조종자의 적성검사용 회전의자(속도를 변화시키거나 급격히 정지시키는 것)].

다만, 보통의 시력·청력·심장 등의 진단에 사용하는 종류의 장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8호)**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성질을 갖는 물품으로서 오락용과 적성검사용 것은 게임용구나 완구로 분류한다(제95류).

(Ⅳ) 오존 흡입기(ozone therapy apparatus)

이 장치는, 예를 들어, 흡입에 의해서, 오존(화학식 O_3)의 치료적 속성을 이용하여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Ⅴ) 산소 흡입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脊髓灰白質炎 : poliomyelitis)]·급성의 호흡곤란·폐(肺 : lung) 발육부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인공 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손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 예: 환자의 가슴에 압력을 가하거나, 흔들여 움직이거나, 강제흡입 등에 의하여 조작되는 기계장치
-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 (C) **“철로 만든 폐(iron lung)”와 이와 유사한 장치**.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 (1) 금속·목재·유리섬유로 만든 체임버(chamber)로서 환자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두부는 밖에 있다)이나 흉곽만을 덮는 소형의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체임버
 - (2) 공기흡입장치(air suction system)와 동력이나 수동식의 긴급 송풍기(emergency blower)로 구성되는 독립된 장치
 - (3) 송풍기를 체임버(chamber)에 연결시킨 두꺼운 기밀관(氣密管 : air-tight tube)

위에 설명한 산소흡입기에는 에어로졸(aerosol) 투약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특히 산소 텐트). 환자가 미립의 연무(煙霧)로 분산된 산소와 약물의 혼합물을 동시에 흡입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VI 참조).

이 호에는 고압 산소실(hyperbaric chamber)이나 감압실(decompression)을 **포함하지 않는다(제9018호)**.

(VI) 에어로졸(aerosol) 치료기

폐장·피부·이비인후·부인과 등의 질환의 치료에 있어 여러 가지 약액[호르몬·비타민·항생물질·기관지 확장제·정유(essential oil) 등]을 연무(煙霧) 상태로 투여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 중 하나로 산소실린더나 압축공기 실린더에 접속하거나 앞에서 설명한 (V)의 산소텐트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단독장치(분무기)가 있다. 다른 것으로는 의사의 진찰실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에어로졸(aerosol) 발생기가 있는데, 이들은 전동압축기·계측기·발생기 본체와 여러 가지 부속품(마스크와 코·입·부인병 등의 노즐)을 포함시킨 캐비닛(cabinet)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스크루식(screw-on) 카트리지에 포함된 압축가스로 작동하는 치아나 잇몸 분무용 에어로졸식 핸드스프레이(분사된 의료물질은 입을 청결하게 하고 치주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를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산소흡입기용의 텐트와 텐트 부착구를 포함한다.

90.20 -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I) 호흡용 기기(breathing appliances)

이 호에는 예를 들어, 비행사·잠수부·등산가·소방수가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자급식의 것(산소나 압축공기의 실린더를 갖춘 장치)과 압축기·압축공기 공급관·저장실린더·(단거리의 경우) 외기에 호스로 접속시키는 식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밀폐하기 전에 잠수복에 부착시키게 되는 잠수모자(helmet)와 호흡용 기기와 결합한 방사선 **예방 보호용 의류**와 **오염 예방 보호용 의류**도 포함한다.

(II) 가스마스크(gas masks)

먼지·유독증기·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갱터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 기기에 있어서 호흡하는 공기는 직접 외부에서 들어오며, 유독가스는 흡수되고 먼지를 빨아들이게 되는 여과장치를 통해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주로 외부를 보도록 된 마스크·출구밸브와 흡입밸브를 갖춘 금속 프레임(frame)·필터나 가슴에 지닌 필터장치에 연결된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가 부착된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간단한 형식의 것으로 입과 코만을 덮는 것도 있다. 이것은 하나나 그 이상의 리본으로 밀착시켜서 덮는 덮개로 되어 있으며, 여과재나 흡수재(석면섬유·스폰지 고무·면화 등을 침투시킨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가 채워져 있다. 여과재나 흡수재는 사용 후에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다.

다음 물품은 이 호의 호흡용 기기나 가스마스크로 간주하지 **않는다**.

- (a) 대체 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나 합성섬유제의 중심 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와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마스크(**제6307호**)
- (b) 먼지·미립자 등의 보호용 마스크로서 거즈한 시트 이외의 여과 기구를 갖추지 않은 간단한 금속 망으로 만든 것(**제15부**)
- (c) 마취용 마스크(**제9018호**)
- (d) 산소나 압축공기의 병이 없이 사용하는 종류의 잠수부의 호흡용 마스크와 수영하는 사람이나 잠수부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일반적으로는 “스노클(snorkel)”이라 부른다](**제9506호**)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90.21 -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 9021.10 - 정형외과용이나 골절 치료용 기기
 - 의치와 치과용품
- 9021.21 -- 의치
- 9021.29 -- 기타
 -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
- 9021.31 -- 인공관절
- 9021.39 -- 기타
- 9021.4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 9021.5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 9021.90 - 기타

(I) 정형외과용 기기(orthopaedic appliance)

정형외과용 기기는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거나 ;
 - 질병 중이나 수술이나 부상 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 이들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둔부질환기구[고관절병(股關節病 : coxalgia) 등]
- (2) 상박골부목(절제후의 팔에 사용한다)(신장용 스플린트)
- (3) 턱뼈용 기구
- (4) 손가락의 견인장치 등
- (5) 포트병(Pott's disease) 치료기구(머리 및 척추를 바로 세운다)
-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제작 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이나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쥘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
- (7) 이빨(齒)의 기형교정용 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링(ring) 등]

- (8) 발의 고정용구[기형족(talipes)용 기기·발 받침대[발용 스프링(spring)제 지지구(支持具 : support)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외과용 장화 등]
- (9) 탈장대(서혜부·정강이·배꼽용 등의 탈장대)와 파열창용 기구
- (10) 척추의 측곡과 만곡의 고정용기구·의료용이나 외과용의 코르셋과 벨트[지지용(支持用 : supporting) 벨트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특성을 가진 것
- (a) 환부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특수 패드·스프링 등
 - (b) 가죽·금속·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 ; 이나
 - (c) 보강된 부분·직물류로 만든 견고한 부분·다양한 폭의 밴드

이러한 물품은 특정의 정형외과상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보통의 코르셋과 벨트(후자가 지대용이나 보대용에 사용하였는지에 상관없다)와 구별한다.

- (11) 정형외과용 서스펜더(suspender)[메리야스 편물(net)이나 뜨개질 편물 재료 등으로 만든 간단한 서스펜더를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목발(crutch·crutch-stick)도 포함한다(보통의 지팡이는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 한다)(**제6602호**).

이 그룹에는 추가적으로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 알려진 보행보조기를 포함하는데, 보행자들이 밀면서 그들을 지지(支持)해주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세 개나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나 전부는 선회(旋回)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管) 형태의 금속 프레임(frame), 핸들과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는 높이가 조정 가능하거나 핸들 사이에 의자를 갖추거나 휴대물품 운반용 철사 바구니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의자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정맥암(varicose vein) 치료용의 스타킹(**제6115호**)
- (b) 간단한 보호구나 장치로서 다리의 어느 부분의 압력을 감소시키도록 만든 것(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 거즈에 반창고를 부착시킨 셀룰러(cellular)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4호**로 분류한다)
-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
- (d) 대량생산된 신발의 안쪽 바닥(inner sole)으로서 편평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아치형으로 한 것 (**제64류**)

또한 이 그룹에는 **동물의 정형외과용 기기**도 분류한다. 예를 들면, 탈장대(脫腸帶)[탈장 트러스(hernia truss)나 탈장 스트랩(hernia strap)] ; 다리나·발의 고정용 기구 ; 동물의 물어뜯는 버릇을 방지하는 특수한 대(strap)와 관(tube) 등 ; 탈출대(prolapsus band)(직장·자궁 등의 기관유지용)·뿔 지지구 등. 다만, 보통의 안장과 마구의 성질을 가진 보호용 기구[예: 마(馬)용 정강이 패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201호)**.

(II) 골절 치료용 부목(splint)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골절 치료구(fracture appliance)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붙이기나 보호하기 위해),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그 밖의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예: 선·아연제·목제의(下肢)용 부목·석고붕대부목·늑골의 골절치료구 등], 또 다른 일부는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부목(splint or cradle) 등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보호용 침대부목, 튜브제의 골절신장기 등]. 다만, 후자의 기구가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의 일부를 구성하여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류의 주 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라서** 또한 이 호에는 판·못 등으로서 골절된 두 부분의 접합이나 이와 유사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외과 의사 인체의 내부에 삽입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Ⅲ) 의지·의안·의치나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

인체의 결합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견상 닮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의안(義眼)용품

(1) **의안(義眼 : artificial eye)** : 보통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들며, 눈의 각 부분(공막·홍채·동공)의 형과 색을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을 금속산화물을 첨가시켜 만든다. 단벽의 것과 복벽의 것이 있다.

(2) **내안렌즈(intra-ocular lens)**

마네킹 인형(tailors' dummy)·모피제 목도리 따위 등의 의안(義眼)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26호**나 **제7018호**에 분류한다); 인형이나 완구용 동물의 의안(義眼)은 **제9503호**와 **제7018호**(유리제인 경우)에 분류한다.

(B) 의치와 의아용품, 예:

(1) **고정의치(solid artificial teeth)** : 보통 자기나 플라스틱(특히 아크릴 수지)으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고정체를 침투시키기 위한 다수의 소공을 가진 “유공도치(diatoric)”(보통 어금니용)·두 개의 금속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보통 앞니와 송곳니)이나 덴탈 플레이트(dental plate) 위에 고정된 금속제의 치능선(ridge) 위로 슬라이딩하는 치구를 가진 것(일반적으로 앞니와 송곳니용)이 있다.

(2) **중공(中空 : hollow)의치** : 고정의치의 경우와 같이 자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며, 앞니·송곳니·어금니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이상의 어느 것이나 고정의 방법에 따라 “유정도치(pivot teeth)”[조정된 치근에 매립시킨 금속으로 만든 작은 핀이나 피벗에 부착한다]나 “치관(crown)”(먼저 형의 치근에 합성수지로 부착시킨다)으로 불린다.

(3) **의치열(義齒列 : denture)** : 전치의 것과 부분치의 것이 있으며, 충치상(上)에 가황(加黃) 고무판·플라스틱판·금속판에 의치를 부착시킨 것이다.

(4) **그 밖의 것** : 예를 들면, 실제의 보호용 **금속제관**(금·스테인리스강 등); 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캐스트 틴 바(cast tin bar)**["추봉(heavy bar)"]; 가황(加黃 : vulcanised) 고무제 의치판 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 바(stainless steel bar)**;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이나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socket)·링(ring)·피벗(pivot)·훅(hook)·아일릿(eyelet) 등]

치과용 시멘트(dental cement)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filling)는 **제3006호** ; “치과용 왁스(dental wax)”나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s)”와 같은 조제품(세트의 것, 소매용 포장의 것, 판상·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라스터(plaster)[소석고(燒石膏)이나 황산칼슘제의 것]을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은 **제3407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C) **그 밖의 인공의 인체부분**, 예: 팔·전박·다리·발·코·인조접합부(예: 엉덩이·무릎용)·혈관과 심장변 대체용 합성 직물제의 튜브

이 호에는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와 뼈 재생용 시멘트(**제3006호**)는 **제외한다**.

(IV) 보청기(hearing aid)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 개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리시버·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이다. 리시버는 귀의 속이나 귀의 배부에 끼도록 되어 있거나, 귀에 손으로 갖다 대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난청을 극복하기 위한 기기에 **한한다**. 따라서 말을 쉽게 듣기 위하여 회의실에서 사용하거나 교환수가 사용하는 헤드폰·증폭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V)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인공성대(speech-aid) : 부상이나 외과수술의 결과로 성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전자 임펄스(impulse) 발생기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목에 눌러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 목구멍 속에 진동을 일으켜 사용자는 그 진동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변조하는 것이다.
- (2) 페이스메이커(pacemaker) :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의 크기와 중량은 대체로 회중시계의 것과 같은 정도이며, 환자가슴의 피부 밑에 이식해 넣는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그 밖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그 밖의 기관(예: 폐·직장·방광)을 자극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있다.
- (3) 시각장애우용 전자식 보조기 : 이것은 주로 전지에 의하여 작동되는 초음파송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초음파의 빔(beam)이 장애물에 부딪쳐 반사해서 되돌아 올 때까지의 시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의 변화는 적당한 기구(예: internal ear-piece)를 통하여 그 사용자로 하여금 장애물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장애물과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4)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예: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支持: support)하거나 대체하는데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충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2.13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9022.14 --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9022.19 -- 그 밖의 용도의 것

-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9022.29 -- 그 밖의 용도의 것

9022.30 - 엑스선관

9022.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I)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이나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유닛이다. 이 부분품은 방향이나 높이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나 그 밖의 지지물에 현가되거나 고정되어 변압기·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예:

(A) **진단용 엑스선기기** : 이 장치는 엑스선이 보통의 광선으로 투과되지 않는 인체를 관통하여 그 인체의 밀도에 따라 흡수량이 증대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투시용[radioscopic(fluoroscopic)] 장치** : 검사를 행할 기관을 투과한 엑스선은 스크린 위에 음영을 던지도록 되어 있다. 그 영상의 농도의 변화는 그 기관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2) **직접촬영용 장치(radiographic apparatus)** : 검사를 행할 신체를 투과한 엑스선을 직접 사진용 건판이나 필름에 작용시켜 그 위에 기록하는 장치이다. 동일 장치로서 투시용과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

(3) **특수설계 사진기를 결합시킨 엑스선 장치로 구성된 기기** : 엑스선 스크린 위에 투영된 상을 장착된 사진기로 촬영하는 것이다. 엑스선 장치와 사진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상 별도로 포장되었을지라도 일괄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다만, 사진기가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때에는 제9006호로 분류한다.

(B) **방사선 치료 기기(radiotherapy apparatus)** : 엑스선의 관통력과 어떤 종류의 생체조직에 대한 파괴효과는 피부병이나 종양 등 많은 질병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의 치료는 광선(ray)이 도달된 깊이에 따라 “표면치료(superficial)”나 “심부치료(deep)”라고 불린다.

(C) **공업용 엑스선 기기(X-ray apparatus for industrial use)** : 이 엑스선기기는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야금공업에서 합금 중의 기포를 발견하거나 균질성의 검사에 ; 기계공업에서 조립품의 정확도 검사에 ; 전기공업에서 전력케이블이나 젯빛 유리 전구의 검사에 ; 고무 공업에서 타이어의 내부케이스의 반발(反撥) 시험(예: 캔버스의 신장)에 ; 그 밖의 여러 방면에서 재료의 두께를 검사하거나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이상의 각 방면에 사용하는 엑스선기기도 일반적으로 개개의 특수 목적 때문에 어댑터와 특정의 부속기기가 갖추어진 것 이외에는 상술한 진단용 기기와 유사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재료의 화학적 성분은 물론 결정구조(crystalline structure)의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 기기(엑스선 회절과 엑스선분광분석기기) ; 엑스선은 결정(結晶)으로 회절되어(回折) 사진 필름이나 전자계수기 위에 회절영상(diffraction image)을 투사한다.

(2) 지폐나 그 밖의 증권의 투시검사용 기기

(II)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은 원자의 자발적 변환에 의해 방사선 발산 성질이 있는 방사성 물질을 방사한다. 이 방사성 물질은 용기(보통 납으로 도포된 강철)에 놓여지며, 이 용기는 방사선을 한 방향으로만 통과하도록 설계되어진 구경을 갖고 있다. 감마선은 엑스선과 같은 용도에 많이 사용한다.

다음 형식의 것은 사용하는 방사선과 그 용도에 따라 구별한다.

(1) **치료용 기기(therapy apparatus)** : 라듐 · 방사선코발트 ·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원으로 사용한다.

(2) **방사선 검사용 기기(apparatu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 : 주로 금속 부분품의 구조를 파괴시키기 않고 검사를 하는데 사용한다.

(3) **계측기기** : 베타선과 감마선을 사용하여 재료(판 · 피복재 · 이와 유사한 것)의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 계측기, 용기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산품(의약품 · 식료품 · 스포츠총의 탄약통 · 향수 등)의 감시 기기나 이온화 풍력계. 이러한 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검사대상 요소에 투사한 방사선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얻는다.

(4) **화재경보기(fire alarm)**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연기검출기가 결합된 것

이 호에는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단순히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기기는 임의적인 조건에서 눈금이 매겨진 경우에도 **제외한다(제9030호)**.

(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 · 고압 발생기 · 조절반 · 스크린 ·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엑스선관(X-ray tube)** : 전기에너지를 엑스선으로 변환시키는 기기이다.

엑스선관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특성의 것이 있다. 엑스선관은 주로 전자(electron)가 방출되는 음극과 그 전자가 충돌되어 엑스선을 방출케 하는 타겟[대(對) 음극이나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류(電子流 : electron)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개의 중간전극을 갖춘 엑스선관도 있다. 그 전극은 적당한 전기원촉자(援觸子 : electrical contact)를 갖춘 관(管)이나 용기(보통 유리로 만든 것)에 기기되어 있다. 엑스선관은 종종 기름을 가득채운 전기절연성의 금속용기에 넣어져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스가 봉입된(封入 : filled) 관도 있으나 보통 고도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엑스선관용 유리로 만든 외피(envelope)는 **제외한다(제7011호)**.

(B)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기** : 예를 들면, 전자류(電子流)를 고속으로 가속시켜서 높은 에너지의 엑스선을 발생하는 베타트론(betatron)을 갖춘 기기이다. 베타트론과 그 밖의 전자가속기로서 엑스선의 발생용이 아닌 것이나 엑스선기에 부착되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43호)**.

(C) **엑스선용 스크린(X-ray screen)** : 투시용 스크린은 표면에 형광체가 도포된 것으로서 그 위에 방사선을 받는다. 그 형광체의 표면은 보통 시아노 백금산(白金酸 : cyanoplatinate) 바륨 · 황화카드뮴 · 텅스텐산(tungstate) 카드뮴으로 되어 있다. 또한 납(鉛) 유리의 표면제가 도포된 것도 종종 있다. 증감 스크린으로 불리는 약간의 스크린에는 엑스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영상(image)의 농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활성화광선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D)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 변압기와 정류관을 절연된 스크린의 내측에 설치한 것으로서 ; 엑스선관에 접속시키기 위한 고압접점을 갖추고 있다. 이 호에는 엑스선기에 전용되는 고전압 발생기만을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 **엑스선용 조절반** : 엑스선의 투사시간과 전압을 조절하는 기기로 되어 있으며, 흔히 필요 불가결의 부품을 형성하는 방사선량계(放射線量計)도 부속되어 있다. 이 호에는 엑스선기기전용의 조절반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F) **엑스선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기에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인지 별개의 물품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엑스선기기 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테이블 · 의자 등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하며 ; 다만, 엑스선기기의 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테이블 · 의자 등은 **제외한다(제9402호)**.

*
* *

이 호에는 방사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 피뢰기(避雷器 : lightning arrester)를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애플리케이터(applicator)** : 보통 납(鉛)으로 테를 붙인 것으로서, 엑스선관구(X-ray tube port)나 방사선용“봄(bomb)”에 부착되어 있으며 ; 때로는 “로컬라이저(localiser)”로도 불린다.
- (2) **백열전등 센터링기기** : 특히 방사선 치료용 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직접 피부에 조명하여 치료 부분을 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앞의 애플리케이터(applicator)와 같이 이 기기도 보통 엑스선관이나 방사선용 “봄(bomb)”의 방사구(放射口)에 부착되어 있다.
- (3) **방호용 케이싱(protective casing)** : 납(鉛)유리나 그 밖의 엑스선을 투과하지 않는 염류(鹽類 : salt)를 기초로 한 물질로 만든 것. 조작자를 유해한 방사엑스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엑스선관구(管球)의 주위를 덮는데 사용한다.
- (4) **납(鉛) 피복이나 납(鉛) 유리로 만든 방호용 스크린과 쉴드** : 조작자와 엑스선관의 중간에 넣는 것

다만, 조작자가 착용하는 방호용품[예: 납(鉛)을 넣은 고무로 만든 오버롤류(overall)나 장갑(gloves)(제4015호), 납(鉛)유리로 만든 고글(제900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 *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리듬칩과,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관(tube)관·칩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28류)
- (b) 사진용의 건판이나 필름(제37류)
- (c) 엑스선기기의 전력공급에 사용하는 케노트론(kenotron)과 그 밖의 정류관이나 밸브(제8540호)
- (d) 엑스선 사진의 검사용 기기(투영기를 포함한다)(제9008호나 제9010호)와 엑스선사진의 현상용 기기(제9010호)
- (e)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방사선 요법)(제9018호)
- (f)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기기 ; 제9030호에 분류한다(엑스선기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소호해설]

소호 제9022.12호

이 소호에는 소위 말하는 전신 컴퓨터 단층 촬영기(whole-body computed tomograph)를 포함한다. 이는 전자(電子)식 방사선 사진법(단층 사진술)에 의해 전신 진료를 위한 방사선 진단법이다. 신체부위는 X선 빔(beam)에 의해 단계별, 층별로 스캔(scan)하며, 몸 속에 있는 X선의 감쇠(減衰 : attenuation) 정도를 환자가 누워 있는 테이블이 들어 있는 터널 주위에 고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수백 개의 검출기에 의하여 측정한다.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를 시스템 자체의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영상으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나타낸다. 단층영상은 보통 시스템에 장착된 특수카메라로 촬영되며, 이는 필요에 따라 전자(電磁)식으로 저장한다.

90.23 -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전시용 기구 : 예를 들면, Wimshurst(윌스허스트)의 기계(전기실험용)·Atwood(애틀우드)의 기계(중력의 법칙 설명용)·Magdeburg(매그데부르크)의 반구(半球 : hemisphere)(대기압의 효과 설명용)·Gravesande(그라브산드)의 링(ring)(열팽창의 설명용)·Newton(뉴턴)의 원판(백색광의 혼성색의 설명용)과 같은 것이다.
- (2) 인체나 동물의 해부모형(관절로 연결되는 것인지 전기조명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크리스털 등으로 만든 입체모형 등 : 이러한 종류의 모형은 보통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 (3) 연습용 동체(胴體 : dummy) : 인간과 같은 실물이 재현되도록 인조호흡기가 있는 인체와 같은 크기로 모형을 부풀린 것 ; 흡입식의 인공호흡소생훈련용에 사용한다.
- (4) 선박·기관차·원동기 등의 절단모형(내부나 중요 부분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 절단된 것), 무선통신기의 배선모형(무선통신원학교용), 기계 내의 윤활계통모형 등의 전시용 패널(panel)(전기조명식인지에 상관없다)
- (5) 쇼케이스(show-case)와 실물설명용 패널(panel) 등(섬유·목재 등의 원재료건본 전시용이나 공업학교교육에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과정 설명용 등)
- (6) 포술훈련용 모형 등(실내의 훈련코스에 사용한다)
- (7) 현미경 학습용의 조제 슬라이드
- (8) 도시·기념관·건물 등의 모형[플라스터(plaster)·판지·나무 등의 것]
- (9) 항공기·선박·기계 등의 축소모형(일반적으로 금속나 목재로 만든 것, 예: 광고·선전용의 것 등) : 다만, 오직 장식용으로만 적합한 모형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10) 입체 지도(relief map)(지방·도시·산악 등)·입체 도시계획도·입체 지구의·천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1) 탱크운전기사의 훈련(고급훈련을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모의 군용탱크 : 이러한 기기는 주로 다음의 구성요소가 있다.

- 이동가능한 플랫폼(platform) 위에 부착된 운전실
- 트레블링 겐트리(travelling gantry) 위에 부착된 지형의 축소모형과 텔레비전 카메라로 구성된 뷰잉 시스템(viewing system)
- 지휘자용 콘솔(console)
- 컴퓨터 유닛(unit)
- 액압동력장치
- 전기공급용캐비넷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총설 참조).

*
* *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설계도(plan) · 배선도(diagram) · 설명도(illustration) 등으로서 단순히 인쇄에 의하여 만든 것(교사용 · 광고 선전용의 것을 포함한다)(**제49류**)
- (b) **제8805호**의 항공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등
- (c) 오락검용의 진시용품(예: 어떤 기계 부분품의 모형 ;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완구용 기관차 · 보일러 · 크레인 · 비행기 등)(**제95류**)
- (d) **제9618호**의 자동인형(automaton) 등
- (e) **제9705호**의 수집품
- (f)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예: 입체 설계도(relief plan)와 입체 지구의(relief globe)](**제9706호**)

90.24 -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 금속재료 시험기기

9024.80 - 그 밖의 기기

9024.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금속·목재·콘크리트·방직용 섬유·직물·종이나 판지·고무·플라스틱·가죽 등 여러 가지 재료의 경도·탄성·항장력·압축성·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물질의 미세구조시험용 기기(예: 금속현미경이나 그 밖의 현미경 - **제9011호**나 **제9012호**)와 분석용의 기기나 다공성·열팽창 등과 같은 물성 측정용 기기(**제9027호**)
- (b) 단순히 폭·두께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예: 기계적인 부분품으로 만든 선(wire)·금속물품 등] (**제9017호**나 **제9031호**)
- (c) 재료의 결합·균열·틈·흠의 검출용 기기(**제9031호**)

이 호의 기기는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연구실에서 제품(보통 주의 깊게 선택된 시료나 표준시료)의 검사에 사용하며, 제조공정 중·건설작업 중(작업 현장에서)·창고 등에서 반출하는 상품의 검사에도 사용한다.

이 기기에는 수 톤의 중량을 갖는 대형의 기계식·전기식·유압식(hydraulic)의 장치로부터 휴대식이나 포켓형에 이르는 소형의 것까지 있다. 만능형(예: 금속시험용)의 것은 부속품을 교체함으로써 경도시험·신장시험·굴곡시험 등에 사용한다. 보통 스타트-스톱(start-stop) 원리로 조작되나, 자동식이나 반자동식의 것도 있다(예: 조립공정을 마친 대량의 제품검사용).

시험결과는 눈금으로 직접 확인(때로는 간단한 확대경·내장된 현미경이나 윤곽촬영기와 같은 간단한 광학기구를 보조수단으로 한 것도 있다)하거나, 시험편(試驗片)을 별도 현미경 검사를 하여 확인한다(예: 금속의 강구시험에 의한 흠의 검사 등). 그 밖에 시료의 응력(應力)·왜력(歪力) 등을 기록하는 설비를 갖춘 것도 있다.

(I) 금속재료 시험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기기를 포함한다.

- (A) **항장력(인장)시험기(tensile testing)** : 시료편(試料片)·봉·선·케이블·스프링 등의 장력시험을 행하는 것이다. 항장력시험은 금속의 탄성, 파괴응력과 중요한 성질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항장력시험기에는 수직형이나 수평형·엔드리스 스크루(endless screw)형·유압형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지만 ; 다만, 기본적으로 이들 각각은 피검시료를 고정하기 위한 조오(jaw)나 클램프(clamp)로 구성되어 있다.

- (B) **경도시험기(hardness tests)** : 봉(bar)·기계부분품 등의 경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금속의 경도는 그 금속의 눌림에 대한 저항으로 측정한다. 경도시험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다.
- (1) **강구(鋼球) 인덴테이션(indentation) 시험**[경구(硬球)나 금속탄화물구(球)를 사용한다]이나 **브리넬(Brinell)시험** : 레버(lever)·스프링·피스톤을 이용하여, 강구에 계속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충돌하거나 반복된 타격을 가하지 않은 것) 움푹한 곳이 만들어지며 이 움푹한 곳의 직경을 현미경으로 측정한다.
 - (2) **피라밋형 다이아몬드압자 인덴테이션 시험** : 이 시험은 **록웰(Rockwell)방법**[움푹한 곳의 깊이를 다이얼 콤파레이터(dial comparator)로 측정한다]이나 **빅커스(Vickers)방법**(움푹한 곳의 면적을 현미경으로 측정한다)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시험의 다른 형태[모노트론(Monotron)시험·쇼어(Shore)시험·누우프(Knoop)시험 등]의 시험방법이 있으며, 또한 강(鋼)으로 만든 압자(壓子)를 이용하여 연성(軟性) 금속을 시험하는 기구도 있다 [예: 록웰(Rockwell)방법]. 이상의 세 가지 시험은 동일한 시험기로 행하여질 수도 있다.
 - (3) **반발시험(rebound test)** : **스클레로스코프(scleroscope)**나 **스클레로그래프(sclerographs)**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보통 피라밋형 다이아몬드를 선단에 부착시킨 작은 해머가 일정한 높이로부터 시료 위로 낙하한다. 시료금속이 단단하면 할수록 해머의 반발력은 높아진다.
 - (4) **진자경도계(pendulum hardness test)** : 시료에 미치는 진자의 진동으로 경도를 측정한다. 진자(pendulum)는 중앙에 강구(steel ball)를 부착시킨 역U자형의 주철체(cast iron)이다.
- (C) **굴곡시험기(bending test)**
- (1) **충격시험**이 봉(bar)에 대하여 행해진다(V자형으로 새긴 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시료 막대(bar)를 두 개의 지지구(支持具) 위에 놓고 그것이 파괴될 때까지 망치로 반복되는 충격을 주어서 ; 그 강도를 측정한다.
 - (2) **압력시험용(pressure test)**[주로 봉(bar)에 사용한다], **굴곡시험용 기계(bending test)**(스프링용)
- (D) **연성시험기(ductility test)** : 주로 금속판의 시험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강구(鋼球)를 선단에 부착시킨 압자를 구멍이 뚫리기까지 그 판에 점차로 눌러서, 처음 구멍이 뚫리는 순간을 기록하고 그 다음 응력(stress)과 편향(deflection)을 측정한다.
- (E) **절곡시험용(folding test)**(시트·봉·선)·**압축시험용(compression test)**과 **전단시험용(shearing test)**(주로 주철용)의 기계
- (F) **피로시험기(fatigue test)** : 시료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단순응력(simple stress) 뿐만 아니라 결합되고 변동하는 응력(compound and varying stress)의 시험에도 사용한다. 결합된 응력의 시험용으로는 **회전굴곡 피로시험기(reversal torsional machine)**(시료를 고속으로 회전시킨다)·**역염력피로시험기(reversal torsional machine)**(뒤틀리는 방향이 교차적으로 역전한다)·**전자피로시험기(electro-magnetic fatigue-testing machine)** 등에 의해 수행한다.

(II) 방직용 섬유시험기

이 그룹에 해당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주요한 시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파괴시험에 대한 신장성(extensibility)과 저항력(resistance)·파열시험에 대한 탄성(elasticity)이나 항장력(tensile strength)과 이와 유사한 시험(과 이러한 시험을 결합한 것)** : 이러한 시험을 하는 재료는 섬유나 실·로프(rop)나 케이블·보통의 직물·웨빙(webbing)·벨트 등이다.

이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의 **동력시험기(dynamometer)**의 보조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그 작동의 원리(예: 진자나 밸런스레버 등의 동력시험기)에 따라 명명되거나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재료(예: 단사·꼬임사나 로프, 유리섬유, 타래, 직물 등의 동력시험기)에 따라 명명되며 ; 또한 이 시험은 **신장계(extensometer)**를 사용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몇몇 동력시험기는 직물의 천공시험용의 장구를 갖추고 있다.

- (2) **시료직물의 치수의 변화 신축을 알아보는 시험기기** : 시료직물의 신축은 건조나 습윤 상태로 잡아당긴 후에 측정한다.
- (3) **마찰소모시험기기(wear and tear test)** : 이러한 시험은 마찰을 받기 쉬운 직물[시트(sheet)·의류·테이블린넨 등]이나, 때로는 실 그 자체에 대하여 행해진다.

이 시험에는 **마찰시험기·소모시험기** 등을 이용한다. 시험용 직물은 일정한 장력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마찰장치에 의하여 점차로 닳게 된다[연마판·금속 플랜지(flange)를 갖춘 회전실린더·강(鋼)제 밀링 휠 등]. 마모저항은 시료용 직물을 마찰시켜 절단하는데 소요된 회전수로 측정한다.

이 호에는 직물의 관리공정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기기[예: 실(絲)의 균질성의 검사기; 정경기(warping-frame)나 권사기 등에서 실에 가해지는 팽팽함의 정도를 검사하는 스트레인 검사기; 실의 비틀림을 측정하는 연수계(yarn torsion counter)와 연진동기록계(torsiograph)]는 **포함하지 않는다(제9031호)**.

(Ⅲ) 종이·판지·리놀륨·연질의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시험용 기기

주로 확장력(신장성·파괴중하 등의 측정)이나 천공의 저항에 관하여 시험을 행하는 것이다. 측정에는 직물 시험에 사용하는 **동력시험기(dynamometers)**와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한다.

이 그룹 **파열강도시험기·절곡시험기** 등(예: 종이의 시험에 사용하는 것)·**탄성시험기·반발시험기·확장력시험기·마찰시험기·소성시험기**(예: 고무나 플라스틱에 사용한다)가 포함한다.

(Ⅳ) 그 밖의 재료 시험기기

목재·콘크리트·경질(硬質) 플라스틱의 대부분에 대하여도 항장력·굴곡·경도·압축·전단·마모성 등의 시험은 금속재료 시험[볼-임프린트(ball-imprint)·충격 등에 의해서]에 사용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유사한 시험기로 행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소형의 것으로 사형구조주물의 항장력·굴곡저항·압축저항 등의 측정용으로 설계된 것 등 많은 기기를 분류한다. 완성 가공된 주형(foundry mould)이나 심형(mould core)의 표면경도의 측정용 시험기도 이 호에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90.25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 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9025.19 -- 기타

9025.80 - 그 밖의 기기

9025.90 - 부분품과 부속품

(A) 액체비중계(hydrometers)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고체나 액체의 비중이나 비중에 관계가 있는 어떤 임의적인 값(value)(예: 증류주의 알코올 도수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접 눈금을 읽도록 되어 있으나 때로는 눈금읽기를 다른 장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보통 유리로 만든 것(양은 · 은 등의 금속으로 만든 것도 있다)으로서 한쪽 끝에 수은이나 미세한 납으로 된 추(shot)가 달려 있다. 추는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비중의 액체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는 추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유리통에 봉입되어 있는 비중계[예: 축전지 중의 산(酸)의 농도 측정용]이 있는가 하면 온도계와 결합된 것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명칭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알코올비중계 ; 검당비중계(양조나 설탕의 제조에 사용한다) ; 검염계 ; 검유계 ; 산(酸)농도계[축전지나 그 밖의 산(酸)의 비중 측정용] ; 뇨비중계 등이 있다. 한편 발명자의 이름을 붙인 것도 있다[예: 보오메(Baumé) · 브릭스(Brix) · 볼링(Balling) · 베이츠(Bates) · 게이 루삭(Gay-Lussac) · 리히터(Richter) · 트랄레(Tralle) · 사이크스(Sikes) · 스토파니(Stoppani) 등]. 니콜슨(Nicholson)의 비중계는 고체의 비중측정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그 밖의 방법으로 비중을 측정하는 기구 : 예를 들면, 비중계[pycnometer(specific gravity bottle)] (**제7017호**) · 비중이나 정역학(靜力學 : hydrostatic) 저울(**제9016호**)
- (b) 특정의 보석장치로서 부력식 측정방법에 의한 기기가 아닌 것[예: 지방측정기(버터의 지방함량 측정용) · 요소계(요소의 함량측정용)]. 이들은 **제7017호**에 분류한다.

(B) 온도계(thermometer) · 온도기록계(thermograph) · 고온계(pyrometer)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액체봉입 유리관 온도계(glass thermometer)** : 가정용온도계(방 · 창용 온도계 등) · 부력식 온도계(floating thermometer)(욕조용 등) · 체온계 · 공업용 온도계[보일러용 · 노(爐)용 · 고압솥용 등] · 실험실용 온도계(열량측정용 등) · 특수기상용 온도계(예: 태양이나 지구의 복사열 측정용) · 수로 측량용 온도계[예: 심해탐색용 가역(reversible)온도계] 등이 있다. 이 호에는 최고최저한난계(minimum and maximum thermometer)라 불리는 유리 온도계도 포함한다(기록되어 있는 최고와 최저온도를 지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2) **금속온도계(metallic thermometer)**[특히 두 종의 금속스트립을 함께 용접해서, 그 열 팽창율이 차이를 이용하는 바이메탈식(bi-metallic) 온도계] : 주로 기상 상황의 관측, 공기 조절용, 그 밖의 과학적이거나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 방열기(radiator) 물의 온도를 지시해주는 자동차용 온도계에는 보통 이러한 형식의 것이 많다.
- (3) **팽창(expansion)온도계나 압력(pressure)온도계**(금속장치를 갖춘 것) : 액체·증기·가스 등의 팽창매체가 온도변화에 의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르돈 관(Bourdon tube)이나 이와 유사한 압력측정장치를 자극시키면 지시계의 지침이 움직이는 방식의 온도계이다. 대부분의 것이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 (4) **액정고온계(liquid crystal thermometer)** :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 성질(예: 색채)이 변하는 액정(liquid crystal)이 함유된 것
- (5) **전기식 온도계(electrical thermometer)와 전기식 고온계(pyrometer)**. 예:
- (i) **저항온도계(resistance thermometer)와 저항고온계(pyrometer)** : 금속(예: 백금)이나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다.
- (ii) **열전대 온도계(thermocouple thermometer)와 열전대고온계(thermocouple pyrometer)** : 두 개의 서로 다른 전기도체를 접속시켜 가열하면 온도에 비례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사용하는 금속의 결합에는 일반적으로 백금과 백금-로듐의 합금, 구리와 구리-니켈합금 ; 철과 구리-니켈합금, 니켈-크로뮴합금과 니켈-알루미늄합금이 있다.
- (iii) **복사온도계(radiation pyrometer)(광학식의 것을 포함한다)** : 복사고온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 예:
- (a) **고온계(pyrometer)** : 이것은 발열체로부터 나오는 복사열을 요면경(凹面鏡 : concave mirror)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예를 들면, 열전대의 열접점의 면경에 초점에 맞추어지게 된다.
- (b) **필라멘트 소실형 고온계(disappearing filament pyrometer)** : 온도는 가감저항기(rheostat device)에 의한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의 광휘도 변화에 따라 측정한다 (이 측정은 조정되는 방사상의 광휘도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 전기식 온도계와 전기식 고온계에는 때때로 노(爐 : furnace)·오븐·발효조 등의 작동을 제어시키는 자동조정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결합된 장치는 **제9032호**에 분류한다.
- (6) **광학온도계[측광큐브(photometric cube)형]** : 중심이 표준백열전구로 조명되고 그 주위에 고온체로부터의 빛(光)이 조명되도록 된 프리즘이다. 에멀션(emulsion)을 도포하여 농도를 변화시키는 유리원판이 고온체로부터의 명암을 변화시키도록 회전한다. 프리즘에서 보는 중심과 주위의 광휘도(光輝度 : degrees of brightness)를 일치시켰을 때의 원판의 회전수가 고온체의 온도를 표시한다.
- (7) **광학온도계[필라멘트소실(disappearing filament)형]** : 고온체로부터의 방사광과 표준 램프에서 나오는 일련의 스모크드(smoked) 유리의 사이에 놓거나, 온도의 눈금을 붙인 흡수 유리제의 썬기를 회전시킴으로써, 이 양자를 일치시켜 온도를 측정한다.
- (8) **고온측정용 망원경[선광성(旋光性 : rotary polarisation)을 이용하는 것]** : 두 개의 니콜프리즘(Nicol prism) 사이에 눈금을 매긴 석영결정이 놓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도는 니콜프리즘의 하나에 특정한 색이 착색되기까지 회전시킨 회전각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 (9) **고체(예: 점토)의 수축성을 이용하는 고온계** : 다이얼(dial)의 앞에서 움직이는 암(arm)과 온도를 측정하는 로드(rod)에 연결된 다른 암(arm)과의 진자레버(oscillating lever)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온도를 제시하고, 전기신호등·전기경보장치·계전기·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보조 장치를 갖춘 “**접촉(contact)**” 온도계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고온계(pyrometer)”로도 불리는 금속온도계나 증기압온도계로서 섭씨 최고 500°C~600°C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이 호로 분류한다.

온도기록계(thermograph)도 이 호에 해당한다. 드럼 위의 온도변화를 기록하는 장치(지시기)를 갖춘 온도계로서 ;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시계 무브먼트(movement), 동기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한다.

이 호에는 점토[시료는 달구는 상태(the course of firing)를 측정하기 위하여 달구는 중의 자기로(磁器爐 : ceramic furnace)에서 채취한다]의 수축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캘리퍼형(calliper-type)의 측정기인 “파이로스코프(pyroscope)”를 **제외한다(제9017호나 제9031호)**.

(C) 기압계(barometer)와 자동기록기압계(barograph)

대기압 측정용의 계기이며 ; 따라서 액체와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압력계는 **제외한다(제9026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은기압계와 아네로이드(aneroid) 청우계의 2종이 있다.

보통의 **수은기압계** : 상단이 밀봉된 수은충전 유리관으로 되어 있다. 하단을 수은조 중에 세우는 형식의 것과 사이펀(siphon) 모양으로 구부러져 기압의 관의 개방단에서 움직이는 형식의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형식의 모두 관(tube) 내의 수은주는 대기압과 균형이 맞추어져서, 그 승강에 의하여 대기압을 측정한다[눈금자나 지침부 다이얼(dial)로 표시한다]. 수은기압계에는 포틴 청우계(晴雨計)(조정가능한 스케일을 가진 것)·사이펀 청우계(siphon barometer)(조정척을 가진 것)·해양청우계[짐발(gimbal)에 부착된 것] 등도 포함한다.

아네로이드 청우계(aneroid barometer) : 대기압을 한 개나 수개의 공기를 빼낸 물결의 금속 캡슐이나 얇은 벽으로 된 구부러진 금속관으로 받는다. 이 캡슐이나 관의 변형은 확대되어 대기압을 표시하는 스케일 위의 지침에 전달되거나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기압고도계(barometric altimeter)** : 기압과 고도를 지시하며 ; 다만, 고도만을 지시하는 고도계(특히 항공기용)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9014호**).
- (2) **만관기압계(sympiesometer)** : 이것은 수은 대신에 기름과 같은 액체를 사용하며, 그 기름이 관(tube) 내에 봉입된 기체를 압축하는 것이다.

자동기록기압계는 온도기록계가 온도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기압을 기록하는 것이다 [위의 (B) 참조].

(D) 습도계(hygrometer)와 자기습도계(hygrograph)

공기나 그 밖의 기체의 습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요 형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 (1) **화학적 습도계(chemical hygrometer)** : 화학약품으로 습기를 흡수하여 이것을 칭량하는 방식의 것
- (2) **노점 습도계(condensation or dewpoint hygrometer)** : 노점법(露點法 : dewpoint method) (즉, 수증기가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에 의하는 것
- (3) **모발 습도계(hair hygrometer)** : 모발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 습도에 따라 신축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 모발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을 프레임(frame) 위에 팽팽하게 고정시켜 추를 달고 눈금판 위를 움직이는 침이 붙어 있는 축의 풀리(pulley)에 부착시킨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전기적 신호의 변환으로 움직인다.

- (4) **원환상(圓環狀 : torus-shaped) 유리 튜브로 구성된 습도계** : 수은을 소량 봉입하고 대기에 면하는 한쪽 끝을 반투막으로 봉한 것. 수증기의 압력이 수은에 작용하면 관(tube)은 눈금침에 접촉될 축의 주위를 돈다. 어떤 장치에서는 튜브의 변위(變位)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 (5) **금속제 스트립(strip)(나선형으로 감겨있고 습기가 있는 물질로 도포된 것)이 있는 습도계** : 습기를 빨아들이는 반응은 금속으로 된 스트립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작용은 금속으로 된 끝에 부착된 축에 이송되어 이 축은 다이얼(dial)을 넘어서 이동하는 침을 갖추고 있다. 어떤 장치에서는 그 움직임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 (6) **전기식 습도계(electrical hygrometer)** : 보통 흡수제(예: 염화리튬)의 흡습량에 의한 도전도(conductivity)의 변화나 습도에 비례한 전기적 요소의 용량 변화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 [이 계기에는 측정될 요소의 노점(dewpoint) 측정을 위하여 눈금을 매긴 것도 있다]

다소의 장식적 요소[샬레(chalets)·탑 등의 형을 한 것]를 갖춘 것으로서 기후의 예상되는 좋고 나쁨에 따라 작은 모형이 왔다 갔다 하는 왕복식 청우계(晴雨計)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에 반하여 화학물질을 침투시킨 종이로서 대기의 습도에 따라 그 색이 변화하는 것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822호).

이 호에 분류하는 자기습도계(hygrograph)는 모발습도계와 유사한 것이나, 온도기록계가 온도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습도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다(위의 (B) 참조).

이 호에는 고체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제9027호).

(E) 건습구 습도계(psychrometer)

특수형의 습도계이다. 이들은 습도를 (a) 건식 온도계(dry thermometer)(공기의 온도를 측정한다)와 (b) 습식 온도계(wet thermometer)(증발에 의하여 열을 흡수하는 물로 침투된 재료에 의하여 벌브가 계속 축축하게 유지된다)에 표시되는 온도의 차이를 통해서 측정한다.

전기식 건습구 습도계(electrical psychrometer)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건습구 습도계의 비전기식 온도계 대신에 저항온도계(resistance thermometer)나 반도체(semiconductor)를 이용한다.

*
* *

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의 용도는 예를 들면, 기상용(기상관측용 가정용 등)·실험실용·냉동장치용·인공부화용·공기조절장치용(특히 섬유공장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결합기기(combination of instrument)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각 기기를 결합시킨 것(예: 비중계·온도계·기압계·습도계·건습계·습도계 등을 결합한 것)도 포함되며, 한 개나 여러 개의 다른 기기를 부착시켜 결합한 것이 특정 호에 열거된 기기의 특성을 갖는 것(예: 제9015호의 기상관측기기 등)은 제외한다. 특히 다음에 열거된 기기는 이 호로 분류한다.

- (1) **온습도 기록계(thermo-hygrograph)와 기압·기온·습도자기장치(baro-thermo-hygrograph) ; 일사계(actinometer)**(단순히 두 개의 특수한 온도계를 결합시킨 기기)
- (2) **파고스코프(pagoscope)** : 서리(frost)가 내릴 것을 경보해 주는 장치로서 특히 윈예에 사용한다. 주로 두 개의 온도계를 결합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상용 라디오존데(radio-sonde)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5호의 해설 참조).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예: 다이얼(dial)·포인트·케이스·눈금자].

90.26 -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 9026.10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 9026.20 -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 9026.80 - 그 밖의 기기
- 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기기는 **제외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제8481호**)
- (b) 풍력계와 수리계측용 수준기(level gauge)(**제9015호**)
- (c)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건습구습도계(**제9025호**)
- (d) 물리나 화학분석용 기기 등(**제9027호**)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기록장치·신호장치를 부착하거나 전기식·압축공기식이나 유압식의 광학적 눈금 장치·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용 장치나 검사용 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 관(Bourdon tube)·다이어프램(diaphragm)·벨로우(bellow)·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값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탭·밸브 등을 결합시킨 이 호의 측정기기나 검사기기는 제8481호의 해설에 설명한 것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I) 액체나 기체의 유량·유속의 측정용 기기·검사용 기기

(A) **유량계(flowmeter)** : 이것은 단위시간 당의 용량이나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와 밀폐구[관(piping) 등]를 통해 흐르는 양(量)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積算) 유량계의 원리[터빈형(turbin-type)·피스톤형(piston-type) 등]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차압(differential pressure)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차압(differential pressure)[고정구경(fixed aperture)] 유량계**. 주로 다음의 것으로 구성한다.
 - (i)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구[예: 피토관(Pitot tube)이나 벤투리관(Venturi tube)·간단한 다이어프램·오리피스 플레이트(orifice plate)·특정 형상 노즐(shaped nozzle)]
 - (ii) 차압력계(differential pressure gauge)[플로트(float)식·다이어프램(diaphragm)식·차압식·원환천칭(圓環天秤 : oscillating ring balance)식·플로우 트랜스미터(flow transmitter)식 등]

(2) **가변면적(variable area)**[가변구경(variable aperture)] **유량계**. 주로 중량이 있는 플로트(float)를 넣은 눈금을 매긴 원추형의 관(tube)으로 구성되며 플로트(float)와 관벽과의 사이를 흐르는 액체가 일정한 점에 이를 때까지 흘러서 밀어 올리는 것이다. 고압액체용으로는 자기유량계(magnetic flowmeter)[비자성체의 관(管 : tube) 중에 있는 철제 플로트(float)의 위치를 외부의 자석(magnet)으로 할 수 있는 것]나 밸브유량계(valve flowmeter)[관(管 : tube)의 내부에 갖추어진 홍채조리개(iris diaphragm)가 소형유량계와 평행으로 연결된 것]를 사용한다.

(3) 자기장·초음파·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flowmeter)**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하천·운하 등의 유속을 측정하는 측류식 패들휠(paddle-wheel)은 **제9015호**의 수리계측기기로 분류한다.

(b) 일정한 기간 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을 단순히 표시하는 장치는 **제9028호**의 적산계(積算計 : counter)로 분류한다.

(B) **특수 형식의 풍력계(anemometer)** : 광산·터널·굴뚝·노(爐)·도관의 공기의 유량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날이 달린 팬과 눈금을 매긴 다이얼(dial)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장치에서는 측정값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II) 액체나 기체의 액면의 측정용 기기·검사용 기기

액체용 액면계(level indicators for liquid)와 개소미터의 용적용 지시계(indicator for the content of gasometer)

액체용 액면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로트(float)형** : 플로트(float)에 장착된 원통(column)의 눈금을 직접 읽는 방법이나 플로트의 그 결과를 케이블과 드럼을 이용하여 다이얼 니들(dial needle)에 전달시키는 방식이나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방식의 것

(2) **압축 공기형이나 정역학(靜力學 : hydrostatic)형** : 압력탱크 내의 액면 측정용으로서 차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이색광(二色光 : two-colour light)형(보일러용)** : 물과 증기와의 굴절율의 차를 이용하는 것. 램프·컬러스크린·광학장치·물과 증기의 각각의 높이를 서로 다른 색깔로 지시하는 레벨(level)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4) **전기식(electrical-type)** : 전기저항·정전용량·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나 탱크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수력발전·관개장치 등).

가스측정기(gasometer)의 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칭 “벨(bell)”의 높이는 직접 측정하거나 벨이 케이블과 드럼에 결합되는 다이얼(dial)의 침에 의하여 측정한다.

고형물질의 액면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는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 **제9022호**나 **제9031호**).

(III) 액체나 기체의 압력의 측정용 기기·검사용 기기

압력계(pressure gauge)[예: 압력계(manometer)] :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 내의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액체형(liquid-type) 압력계**(수은·물·그 밖의 액체나 이종의 혼합할 수 없는 액체를 유리관이나 금속관에 넣은 것) ; 이러한 압력계에는 단관(單管 : single column)식·U자관식·경사관식·복관(複管 : multitube)식·진동환상저울식의 것이 있다.

- (2) **금속압력계(metallic pressure gauge)** : 아네로이드 청우계(晴雨計)(aneroid barometer)와 유사한 것으로 한 개나 두 개의 다이어프램(diaphragm) · 캡슐 · 부르돈 관(Bourdon tube) · 나선관 · 그 밖의 압력감응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이 요소는 직접적으로 지침을 움직이거나 전기적 신호를 변환한다.
- (3) **피스톤(piston)형 압력계** : 압력이 스프링에 의하여 중하되거나 지지된 피스톤으로 직접 으로나 다이어프램(diaphragm)을 거쳐 움직이는 것
- (4) **전기식 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 : 전기적 현상(예: 저항 · 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저압력 측정용의 **진공계**[열이온식 진공관(3극진공관)용의 전리 게이지(ionisation gauge)를 포함한다]. 이것은 잔유 기체의 미분자가 전자와 충돌됨으로써 발생하는 양이온이 음판방향으로 옮겨진다. 열이온식 진공관(3극진공관)이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40호)**.

이 호에는 또한 **최대 · 최소형 압력계(maximum and minimum type pressure gauge)**를 분류한다. 차동압력계(differential pressure gauge)는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형을 포함한다. 이중의 액체를 사용하는 형 · 부동(浮動)형 · 진동환상저울(oscillating ring balance)형 · 다이어프램(diaphragm)형 · 캡슐형 · 볼(ball)형(액체가 없는 것) 등

(IV) 열 측정계(heat meter)

열 측정계는 어떤 장치(예: 온수조작의 가열장치)에서 소비된 열량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주로 급수량계 · 도관의 입구와 출구에 놓인 두 개의 온도계 · 계수기와 합계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열전대열측정계(thermocouple heat meter)도 포함한다.

중양난방의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시키기 위하여 고층집합주택의 각 실의 방열기(radiator) 위에 장치한 소형의 열 측정계는 온도계와 유사한 것으로서, 열에 의하여 증발되는 액체를 넣은 것이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분리되어 있는 그래프식의 기록장치(수개의 측정기나 검정기에 의하여 송달된 지시도가 기록되는 것을 포함한다)가 있다(신호용 · 선택용이나 조정용 장치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90.27 -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 가스나 매연 분석기

9027.2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9027.30 -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7.50 -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기기

9027.81 -- 질량분석기

9027.89 -- 기타

9027.90 -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편광계(polarimeter)** : 광선의 편광면이 선광성물질을 통과할 때에 회전되는 각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주로 광원·편광프리즘과 분석용 프리즘으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분석하여야 될 물질을 장치해 놓은 관(管) 홀더·관측접안렌즈·측정용 자로 되어 있다.

전자식편광계는 보통의 편광계에 사용하는 주요한 광학장치 이외에 광전지도 갖추어져 있다.

- (2) **반영(半影)식 편광계(half-shadow polarimeter)** : 평면 편광이나 타원 편광의 분석 장치

- (3) **당도계(saccharimeter)** : 당용액(糖溶液 : sugar solution)의 농도 측정용으로 설계 제작된 특수한 편광계이다.

- (4) **굴절계(refractometer)** : 액체나 고체의 굴절률(refractive index) 측정 장치[굴절률은 물질의 순도(purity)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상수(constant)의 하나이다]이다. 주로 일련의 프리즘, 관측용과 관독용 접안경, 굴절률에 크게 영향을 주는 온도의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굴절계는 광범하게 사용하며, 특히 식품공업(기름·버터나 그 밖의 지방질의 시험, 잼·과실주스 등의 분석)·유리공업·석유정제·생물학적 연구(혈장이나 배설물 중의 단백질의 측정 등)에 이용한다.

대부분의 굴절계는 베이스나 스탠드에 부착되어 있다. 그 밖에 수지식(hand type)과 공업용 조(manufacturing vat)의 측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식의 것이 있다.

- (5) **분광계(spectrometer)** : 분광하는 발열 스펙트라(emission spectra)와 흡수 스펙트라(absorbption spectra)의 파장(wave-length) 측정용 장치이다. 주로 조정가능한 슬릿콜리메이터(slits collimator)(분석되는 광선이 통과한다)·하나 이상의 조립 가능한 프리즘·망원경·프리즘대(prism table)로 되어 있다. 적외선이나 자외선의 분석용 어떤 분광계(특히 자외선이나 적외선 분석용의 것)에는 프리즘이나 회절격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룹은 **분광기(spectroscope)**[스펙트라(spectra) 관측 장치] ; **분광사진기(spectrographs)** [스펙트럼을 사진건판이나 필름(분광사진)에 기록하는 장치] ; **단색광기(monochromators)** (선스펙트럼부의 특수 선의 분리나 연속 스펙트럼의 일부 분리에 이용되는 장치)를 포함한다.

다만, 이 호에서는 태양의 관측에 사용하는 분광태양경(spectroheliograph)과 분광일조계(spectrohelioscope)(제9005호); 스크린에 투영되는 확대분광사진의 시험용 스펙트럼 투영기(spectrum projector)(제9008호); 측미현미경(micrometric microscope)과 현미경을 장착한 스펙트로컴퍼레이터(spectrocomparator)(광학적 관측에 의한 스펙트럼의 비교시험용)(제9011호)와 전기적 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스펙트럼분석기(제9030호)를 제외한다.

(6) **재료의 질량분석기(mass spectrograph)와 이와 유사한 동위원소의 구성분석용 기기** : 그러나 이 호에는 동위원소 분리용의 장치는 제외한다(제8401호).

(7) **비색계(比色計 : colorimeter)** : “비색계(colorimeter)”라는 명칭은 두 가지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나 고체)의 색을 삼원색(적·녹·청색)으로 만든 색(측정 가능한 혼합비율)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장치이다. 다른 하나는 화학적 분석이나 생화학적 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시약으로 처리하여 색을 내는 경우도 있다)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후자에 속하는 비색계 중에는 시료액과 표준액을 두 개의 유리관에 넣어서 접안렌즈를 통과하는 두 개의 프리즘에 의하여 관찰한다. 이들 기기의 어떤 것은 광전지(photoelectric cell)를 사용한다. 이 형 중 어떤 기기에서는 종이 테이프가 가스와 반응 후의 색을 변하게 하는 시약과 함께 사용한다. 이 기기는 가스와의 반응전후의 색을 측정하는 두 개의 광전지를 사용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比濁計 : nephelometer and turbidimeter)**(용액의 탁도 측정용)·**흡수계(absorptiometer)**·**형광계(螢光計 : fluorimeter)**(형광의 측정용으로서 비타민·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한다)·**표백계(blancometer)**·**불투명도계(opacimeter)**(필프·종이 등의 백색도, 불투명도,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 장치도 포함한다.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

이 기기들 중 어떤 것은 가스를 화학약품으로 흡수시키거나 연소시켜서 정량적으로(volumetrically) 분석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오르자트(Orsat) 가스분석기** : 주로 흡수병·한 개나 수개의 흡수밸브와 측정뷰렛으로 되어 있다.

(ii) **연소식(combustion)이나 폭발식(explosion)의 분석기** : 앞에서 설명한 장치에 연소나 폭발관을 추가시킨 것(백금모관·백금선관 등으로 유도점화장치식 등의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장치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의 모형은 농도(density)식의 것·분별농축(fractional condensation)과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cracking)에 기초하여 작동하거나 다음 원리에 의하여 작동한다.

(i) 기체의 열전도도(heat conductivity)

(ii) 전극(electrode) 상의 가연성 가스(combustible gas)의 열 효과(예: 연도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와 수소)

(iii)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microwave radiation)의 선택적 흡수작용

- (iv) 기체에 의한 투자율(透磁率 : magnetic permeability)의 차이
- (v) 적합한 보조적인 가스성분이 있는 가스와의 화학발광반응
- (vi) 수소염 중의 탄화수소의 이온화
- (vii) 가스와 적당한 액체 시약과의 반응 전후의 전도도의 차이
- (viii) 전지 속에서 고체(특히 탄소분석용의 산화지르코늄)나 액체 전해질과의 화학적 반응

이 호에 분류하는 가스나 연기의 분석 장치에는 공업용의 것[즉, 노(爐 : furnace)·가스 발생기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것]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실험실용의 유리제품은 제7017호에 분류한다.

- (9) **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 : 노(爐 : furnace)·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연기 중을 통과하는 광선(적외선)을 광전지(photoelectric cell)로 받는 것으로서, 연기의 농도(density)에 따라 연기를 통과하는 빔(beam)은 광전지의 전류를 변화시키며 이것을 지시계나 기록장치로 측정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조정밸브로 작동한다.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

- (10) **폭발성가스 검출기(fire damp detector)와 그 밖의 검출기(예: 탄산가스용)** : 갱도용이나 터널용 등의 가스검출이나 본관의 누수검출용의 휴대식 기기도 포함한다.
- (11) **가스 중의 먼지 분석 장치(apparatus for dust analysis in gas)** : 일정량의 가스가 필터디스크를 통해 통과되도록 하여 측정 전후의 필터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틴달로 미터(tyndallometer)**[공기 중 먼지의 양(量)의 측정용과 먼지마스크·필터 등의 시험용의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장치는 흑색유리로 만든 더스트 챔버(dust chamber)·광원·프리즘 측정 장치를 갖춘 광도계 헤드(photometric head)와 회전각 측정용 눈금을 매긴 원판(graduated circular scale)으로 구성되어 있다.
- (12) **산소계(oxygen meter)** : 액체 중의 용해된 산소를 측정하는 것이며, 편광측정용 셀(polarometric cell)을 사용하거나 용존산소와 탈륨과의 화학반응(전해질 전도도의 변화의 측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 (13) **전기분해 자동기록분석기(polarographic analyser)** : 액체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것. 예: 용액에 가라앉은 전극의 전류/저항관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물에 용해된 금속의 흔적을 분석하는 것.
- (14) **습식 화학분석기(wet-chemical analyser)** : 액체의 유기나 무기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것. 예: 금속·인·질산·염산·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Chemical Oxygen Demand)과 총 유기탄소(TOC : Total Organic Carbons) 같은 필수불가결한 매개변수를 분석하는 것. 이 분석기는 시료조제장치·분석 장치(이온 감응전극·광도계·전기분해 자동기록기가 부착된 것)·조정장치(자동분석기상에 부착된 것)로 구성된다.
- (15) **점도계(viscometer)와 이와 유사한 기기** : 점도(viscosity)(즉, 액체의 내부마찰) 측정용의 것이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기반으로 한다.

- (i) 모세관의 원리(principle of the capillary tube) : 즉, 일정한 압력 하에 액체가 모세관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식의 것[예: 오스트발트(Ostwald)점도계·잉글러(Engler)점도계 등]

- (ii) 고체와 액체 사이의 마찰효과에 의하는 것, 또는
- (iii) 액체를 통하여 볼(ball)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의하는 것
- (16) **편광기(polariscope)(strain viewer)** : 유리의 내부응력 측정용의 것[예: 응력(strains)은 급냉·서냉(annealing)·용해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유리를 쉽게 파괴되도록 하는 것]. 주로 전등이 있는 체임버(chamber)·산광기구(light diffusion device)·편광자(polariser)·편광망원경(polarising telescope)으로 구성된다. 유리의 부력은 광채로 나타낸다.
- (17) **팽창계(expansion meter)** : 강(鋼)·금속 합금·코크스(coke) 등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것은 기록식이다(기계식 기록이나 사진기록).
- (18) **다공성(多孔性 : porosity)이나 투과성(permeability)의 측정 장치**(물·공기·그 밖의 기체 등에 대하여) : **포로시미터(porosimeter)**나 **투자율계(permeameter)**(투자율 측정용의 투자율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로 불린다. 종이·방직용 섬유·직물·플라스틱·가죽·모래 등에 사용한다.
- (19) **액체의 표면장력(surface tension)이나 계면장력의 측정 장치[예: 토오션 밸런스(torsion balance)]** : 액체의 표면이나 계면장력은 보통 다음 세 가지 요소 중의 하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정한 모세관으로부터 떨어지는 방울의 무게(일정량의 액을 가진 방울의 수)(방울 중량법) ; 일정 직경의 모세관 중을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모세관 상승법) ; 액면에 뜬 링(ring)을 액면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힘.
- (20) **삼투압 측정용기기(삼투압계)** : 즉, 2종의 혼합이 가능한 액체를 반투막으로 서로 분리시켜 놓았을 때 생기는 압력으로서 두 액체에는 부분적이지만 불균등하게 서로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 (21) **광유(鑛油)와 그 유도체**(예를 들면, 타르·역청·아스팔트)시험장치 : 광유(鑛油)의 인화점(flash point)·경화점(setting point)·유동점(flow point)·방울점(drop point) 등, 파라핀 왁스(paraffin wax)의 녹는점(melting point), 함유량(water content), 불순물 함유량(dirt content), 유황 함유량(sulphur content), 그리스(grease)와 타르의 농도(consistency), 흐림점(cloud point), 냉점(cold point) 등을 측정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 (22) **pH미터와 rH(redoxpotential)미터** : pH미터는 용액이나 혼합물(중성인 순수)의 산도(酸度 : acidity)나 알칼리도(alkalinity)의 측정에 사용하는 것이며 ; rH미터는 용액의 산화력이나 환원력의 측정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기는 수많은 여러 가지 원리에 이용하는 것이나 ; 가장 보통의 것은 전위차 측정법에 사용한다. 이것은 용액의 pH나 rH의 값(value)에 비례되는 전위차(potential difference)를 설정하기 위하여 전극을 이용한다. 이러한 계기는 측정 외에 자동조정에도 사용한다.
- (23) **전기영동(電氣移動 : electrophoresis) 분석용 기기** : 직류가 용액 중을 흐를 때에 발생되는 농도(concentration)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하전립자(荷電粒子 : charged particle)는 생성물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한다.

이 기기는 보통 광전지와 광학적 밀도의 단위로 직접 도수를 매긴 밀리암페어계(milliammeter)로 구성되는 광도계(photometric device)를 갖추고 있다. 여러 가지 용액(단백질·아미노산 등의)의 분석·플라스마(plasma)·호르몬·효소·병원 등의 검사와 중합(重合 : polymerisation)현상의 연구에 사용한다.

- (24)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예: 가스·액체·이온·박층 크로마토그래프) : 가스나 액체의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것. 분석해야 할 가스나 액체는 흡수성 물질의 칼럼이나 얇은 층(thin layers)을 통과하여 검출기로 측정된다. 분석에 있어서 가스나 액체의 특징은 가스나 액체가 흡수성 물질의 칼럼(columns)이나 박층(thin layers)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표시가 되며, 분석해야 할 다른 구성 성분의 양(量)은 검출기의 출력신호의 강도로 표시한다.
- (25) **전자식 적정(滴定 : titration)장치** : 측정용 전극을 사용하여 물·은염(silver salt)·할로젠 등을 적정(滴定)하는 것
- (26) **물질의 유전상수(dielectric constant)·전기전도율(electrical conductivity)·전자기력 흡수율(absorption of electromagnetic energy)·적외선 복사율(infrared radiation)에 기초를 둔 분석기기**(때때로 "고체의 수분 측정기(moisture meters for solids)"라고 불린다)
- (27) **전도도계(conductivity meter)** : 전해질 전도도나 액체 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salt)·산(acid)·염기(base)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 (28) **광전지 농도계(photoelectric cell densitometer)와 광전지 미소농도계(微小濃度計 : microdensitometer)** : 분광사진의 농도측정이나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의 분석용으로 사용한다.
- (29) **광도계(photometer)** : 광(光)의 명암도(intensity of light)를 측정하는 것. 측정하여야 될 광원과 표준광원은 일정한 면 위를 동일한 조도로 조명하도록 놓아서 광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두 개의 광원의 조도를 비교하는 대신에 스펙트라(spectra)로 비교하는 것도 있다. 이때 사용하는 계기를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라고 한다.
- 광도계는 여러 가지의 광학적 처리와 분석에 널리 사용한다[농도·고체의 광택도나 투명도 ; 사진용의 건판이나 필름의 노출도[덴시토미터(densitometer)] ; 투명이나 불투명물질(고체나 용액)의 색의 깊이 등의 측정용].
- 사진이나 영화의 촬영에 사용하는 광도계는 "**노출계(exposure meter)**"로 불리는 것으로서 노출 시간의 측정이나 렌즈의 구경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있다.
- (30) **조도계(luxmeter)**[광원(光源)의 조도(intensity)를 럭스(lux)단위로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31) **열량계(calorimeter)** : 고체·액체·기체에 의하여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을 측정하는 것. 그 주요한 범주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A) **빙열량계(氷熱量計 : ice calorimeter) [분젠(Bunsen's) 빙열량계]** : 얼음이 녹아서 생성되는 빙량의 변화를 원리로 하는 것. 이들은 얼음으로 둘러 싸여진 시험관이 수조(水槽) 중에 잠긴 것과 수은을 넣은 눈금을 매긴 관으로 구성된다.
- (B) **발열형 열량계[베르틀로(Berthelot) 열량계]** : 열량의 이전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 주로 수조(水槽) 중에 물을 채운 칼로리미터 자(calorimetric jar)를 넣은 것으로, 교반기(stirrers)와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다. 다음 두 종의 열량계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는 것이다. 즉 :
- (i) **가스나 액체 연료의 비열(specific heat) 측정량계** : 일정량의 가스나 액체연료를 연소시킨 연소실에 물을 순환시켜, 입구와 출구에서 수온의 차이를 측정한다.
- (ii) **봄(bomb) 열량계** : 물질의 연소열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고체나 액체 시료와 가압산소를 넣은 강(鋼)으로 된 봄(bomb)으로 되어 있다. 적당한 장치로 시료를 산소 속에서 점화시켜 발생열량을 유수열량계(water calorimeter)에 봄(bomb)을 놓아서 측정한다.

이 호에는 **공업용 열량계**도 포함되며 ; 이것은 일정한 발열량을 가진 가스발생기에 부착된다. 다만, 소정의 발열량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가스혼합 비율조정장치를 결합시킨 열량계는 **제외한다(제9032호)**.

(32) **빙점계(氷點計 : cryoscope)와 비점계(沸點計 : ebullioscope)** : 실험실용(laboratory) 유리제품의 속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제7017호)**

(33) **체외진단(in vitro) 검사용으로 임상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이 호에는 시료를 **현미경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얇게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마이크로톰(microtome)도 분류한다. 마이크로톰에는 수동식(직선형 면도칼 모양의 것), 회전식, 활주이동식(sliding carriage type)(수평면이나 경사면)의 여러 가지의 것이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

*
*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실험실용의 내화제품[레토르트(retort) · 자(jar) · 도가니(crucible) · 컵 · 배스(bath) · 이와 유사한 것] (**제6903호**) · 도자성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6909호**)
- (b) 실험실용의 유리제품(**제7017호**)(아래의 상세한 내용 참조)
- (c) **제9011호**나 **제9012호**의 현미경류
- (d) 정밀저울(**제9016호**)
- (e) 엑스선장치(**제9022호**)
- (f) **제9023호**의 실물설명용 기기
- (g) 특정 재료의 시험용 기기(**제9024호**)
- (h) **제9025호**의 액체 비중계 · 온도계 · 습도계나 이와 유사한 기기(실험실용인지에 상관없다)
- (ij) **제9026호**의 기기

*
* *

이 호와 제7017호(실험실용 유리제품)의 두 호 범위 모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분류

이 경우 물품분류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

- (1) 그 물품의 **유리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갖춘 것**은 눈금의 유무나 고무 등으로 만든 부수적인 정지장치·연결 장치 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보통 특정한 기기로 알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 (2) 일반적으로 기기가 일부는 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다른 물질일 경우이거나 유리부분이 프레임(frame)·대(mount)·케이스(case)·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하거나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은 것으로 본다.
- (3) 유리제 부품을 압력계·온도계 등의 측정기기와 결합시킨 것은 실제로 이 호에 속하는 기기로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눈금을 매긴 유리제품으로 된 다음과 같은 기기는 **제7017호**에 해당한다.

낙산측정기(butyrometer)·락토부티로미터(lactobutyrometer)와 이와 유사한 낙농품 검사용 기기 ; 단백질측정계(albuminometer)·요소측정기(ureometer) ; 공기 중의 산소측정기(eudiometer) ; 체적(體積)측정기(volumenometer) ; 질산측정기(nitrometer)·킵(Kipp)의 장치·킬달(Kjeldahl)의 장치·이와 유사한 것 ; 칼슘측정기(calcimeter) ; 분자량결정 등에 사용하는 빙점계(氷點計 : cryoscope)·비점계(沸點計 : ebullioscope)

*
* *

이 호에는 또한 저출력·소형·일반적 구조의 관점에서 명백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예: 시료의 조제나 처리용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에 분류하는 타입의 기기(전기식인지에는 상관없다)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오븐·가압멸균기·건조용이나 스팀용의 오븐이나 캐비닛(cabinet) ; 테시케이터 ; 크러셔(crusher)·믹서 ; 원심분리기 ; 증류기(stills)·프레스(press) ; 필터(filter)와 필터 프레스(filter press) ; 교반기(攪拌機 : stirrer) ; 등을 **제외한다**.

가열장치[분젠버너(Bunsen burner)·스팀히팅 배스(steam-heating bath) 등]·도구·실험용 가구(예: 실험대·현미경대·약품장 등)·브러시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15부·제94류·제96류**).

90.28 -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 기체용 계기

9028.20 - 액체용 계기

9028.30 - 전기용 계기

9028.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fluid flow)이나 전기량(electrical quantity)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흔히 본관의 측관이나 분기로에 부착되었거나 측정용 변환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유량의 일부만이 통과되지만 보조관이나 본관을 통과하는 전체 통과량을 지시하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다.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supply or production meter)는 기록용 시계기구·제어장치·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된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I) 기체·액체의 적산(積算)용 계기(supply or production meter)

이들 계기(meter)는 관(pipe)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 : volumetric)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속측정용의 유량계(flowmete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26호)**.

이 호에는 가정용의 것·공업용의 것·표준계기(일반용 계기의 정확도 시험용)를 포함한다. 또한 간단한 형식의 것 외에 최대·선납·요금계산 등의 계기와 같은 특수계기도 이 호로 분류한다.

적산(積算)용 계기(supply or production meter)는 주로 측정 장치[터빈식·피스톤식·다이어프램식(diaphragm) 등]·유입조절기구(보통 슬라이드 밸브)·전달기구[엔드리스스크루(endless screw)·캠축·기어·그 밖의 장치]·기록장치나 지시계기[포인터식(pointer type)식이나 드럼식(drum type)]로 구성되며, 기록장치와 지시계기는 둘 다를 갖출 수도 있다.

(A) 기체의 적산(積算)용 계기**(1) 습식계기(wet meter)**

이 측정 장치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구획으로 구분된 드럼(drum)이나 휠(wheel)로 되어 있으며 ; 이러한 드럼이나 휠은 반 이상으로 액체(물·기름 등)를 넣은 원통 내에서 회전 되도록 만들어졌다. 계기에 들어가는 가스가 드럼의 물에 잠긴 구획을 채워서 그 실을 수면 위로 올림으로써 드럼이 회전된다. 이 드럼의 회전수를 계수기구에 의하여 지시한다.

계기의 다른 형[회전식의 벨미터(bell meter)]은 가스가 체임버(chamber) 속을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벨(bell)로 구성되며 ; 그 벨은 경사 축 주위를 회전하도록 중심으로 안내되며, 이 경사 축은 계수기구의 구동스핀들에 부착시킨 크랭크된 암(arm)에 연결되는 것이다.

(2) 건식 계기(dry meter)

이 계기에는 여러 가지의 형식이 있다. 측정 장치는 피스톤·격막(diaphragm)·익차(翼車) 팬 휠(fan wheel)로 구성되며, 가스의 압력으로 작동되어 계수장치에 연결한다. 보통의 것은 두 개의 칸막이로 구분한 박스로 구성되며, 각 실은 또한 중앙 격막(central diaphragm)에 의하여 나뉜다. 가스는 연속적으로 이 네 개 실을 출입하여 격막(diaphragm)의 신축운동이 계수장치를 작동시켜 준다.

(B) 액체(liquid)의 적산(積算)용 계기[냉수나 온수·광유(鑛油)·알코올·맥주·와인·밀크 등].
다만, 제8413호의 액체용 펌프(계기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익차식 계기(impeller or fan wheel meter)

이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퍼렌셜 미터(inferential meter)**라고도 불린다. 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팬휠(fan wheel)이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 기구를 작동시켜준다.

(2) 격막 계기(diaphragm meter)

이들 계기는 앞에서 설명한 건식가스 적산(積算)용 계기와 유사하다. 주철제의 실린더는 그 속에 신축성의 격막(diaphragm)에 의하여 두 개의 실로 나뉘지며, 이 격막은 두 개의 실에 액체를 채워주거나 비워줌으로써 넓혀지거나 축소되도록 해준다. 이러한 운동이 계수장치를 작동시켜 주는 것이다.

(3) 왕복피스톤식 계기(reciprocating piston meter)

이 계기는 실린더 내를 왕복하는 한 개나 수 개의 피스톤으로 되어 있다. 마치 증기기관의 경우와 같이 슬라이드밸브(slide valve) 장치는 액체를 피스톤의 상하로 상호적으로 향하게 하여 플러그코크(plug cock)를 개폐시킨다. 피스톤의 동작은 기어(gear)로 계수기구에 전해진다.

(4) 원판피스톤식 계기(disc-piston meter)

이들 계기에 있어서는 피스톤이 회전원판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이것은 구형의 체임버(chamber)를 액체가 채워졌다 비워졌다 하는 두 개의 동등한 실로 나누어준다. 이 원판의 진동운동의 결과가 계수장치에 기어로 연결한다.

(5) 회전피스톤식 계기(rotary piston meter)

이들 계기의 한 형은 부분적으로 체임버(chamber)를 가로질러 돌출된 반경방향의 칸막이를 갖춘 원통형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구는 원통형의 피스톤으로 그 측면이 분리되어 있어서 칸막이 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격실에 액체가 유출입하면 실린더가 진동[반 회전(semi-rotary)]되며, 이 동작은 기어(gear)로 계수기구에 전해진다.

이 계기의 다른 형에 있어서는 체임버(the working chamber)에 칸막이가 없어, 타원형의 피스톤을 회전시키는 것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칸막이를 한 구체 내에 회전콘(nutating cone)을 갖춘 것도 있다.

위의 항목 (2)부터 (5)까지에 언급된 계기는 용적형 계기 타입(positive displacement type)으로 알려져 있다.

(II)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supply or production meter)

이 계기에는 소비 전기량의 측정용[시간당 암페어수(ampere-hours)나 그의 적산값(積算値 : multiples)](전류계)의 것이나 소비 전력량의 측정용[시간당 와트수나 그의 적산값(積算値)](전력계)의 것이 있다. 전압이 일정한 경우에 전류계는 시간당 와트수[또는 그의 적산값(積算値)]로 눈금이 매겨져 있다. 이러한 계기에는 직류용의 것과 교류용의 것이 있다.

전압계·전류계·전력계 등의 기기와 같이 단순히 전기량만을 측정하고 소비전기량이나 소비전력량의 총량을 적산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0호)**.

이 호에 포함되는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electricity supply meter)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형식의 것이 있다.

(A) 전동기형 계기(motor meter)

이 계기는 한 개나 수개의 유도자 · 그 회전속도가 소비전기량이나 소비전력량에 비례되는 회전자(전기자) · 계수기구 · 지침식이나 드럼식 지시계(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것)로 구성되어 있다.

전동기형 계기에는 보통 와(渦)전류제동장치(eddy current brake)가 갖추어져 있다. 이것은 한 개나 수개의 영구자석의 극 사이에서 회전될 때에 와(渦)전류를 발생시키는 금속제동판(metal brake-disc)으로 되어 있다.

(B) 정전형 계기(static meter)

이 계기는 본질적으로 전자정전(electronic static)형 소조립물[예: 지시장치가 장비된 증배기(增倍器 : multiplier)나 정량기(quantifiers)]로 구성되는데 소비전기량과 직접 비례하여 전류나 전기저항을 발생시킨다. 지시장치는 기계식(포인터나 드럼포인터가 부착된 것)이나 전자식의 것이 있다.

이 계기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전납(前納 : prepayment) 계기
- (2) 다율 계기(multiple-rate meter)(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율로 공급되는 전기량을 계산하는 것)
- (3) 최대수요 전력계(maximum meter)[일정기간 동안의 평균부하(average load)의 최대치를 지시하는 것]
- (4) 피크형 계기(peak meter)(최대치를 넘은 소비전력을 지시하는 것)
- (5) 초과전력량계(excess meter)(최고 상승점계기와 유사하며 총사용 전력량도 지시하는 것)
- (6) 충격계기(impulsing meter)[펄스(pulse)송신기를 부착한 것]
- (7) 무효전력량계(reactive meter)
- (8) 전시계기(demonstration meter)
- (9) 직류계기(direct current meter) : 볼트아워(Vh)계기 · 암페어아워(Ah)계기 · 와트아워(Wh)계기
- (10) 펄스입력(pulse input)을 갖춘 계기[충격계기(impulsing meter)에 연결용] : 전력소비 기록기와 합계장치나 최대치장치(지시나 기록)나 초과 장치 등이 부착된 것
- (11) 표준계기(standard meter) : 그밖의 계기의 검사와 눈금측정용에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90.29 -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 9029.10 -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 9029.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 9029.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모든 종류의 단위(회전수 · 항목수 · 길이 등)로 합계량을 지시하는 적산(積算)용 계기(counter)나 지급 요금을 지시하는 적산(積算)용 계기. 다만, 제8473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합계장치 · 제9028호의 가스 · 액체 · 전기적산(積算)용 계기와 제9017호나 제9031호의 면적계(opisometer)나 곡선계(planimete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 (B) 회전속도나 선(line)속도를 시간적 요소에 따라 지시하는 계기[회전속도계(tachometer)와 속도계(speed indicator)](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 (C) 모든 종류의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이러한 기기들은 기록용 시계장치를 장착했는지, 경보장치 · 제어장치 · 제동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기구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A) 적산(積算)용 계기(counting device)

(1)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

기계 부분의 회전수(예: 축의 회전수)의 적산(積算 : count)용 계기이다. 주로 지침식이나 드럼식의 지침계에 연결된 구동축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눈금을 영으로 다시 놓는 장치도 갖추고 있다. 계기는 회전부분에 직접(경우에 따라 회전부분은 전동장치 그 자체를 구동시킨다)이나 원격조작에 의하여 연결한다. 구동축은 회전부분의 회전운동 · 왕복운동 · 맥동(脈動 : pulsating movement)에 의하여 구동된다[예: 부호기(encoder)].

다만,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를 갖춘 사(絲)등급별권취(卷取)릴(yarn grading winding reel) · 토쇼미터(torsiometer) · 이와 유사한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생산량계(production counter)

생산량계의 구조는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에 유사하다. 생산량계는 길이의 측정(예: 방적이나 연사) ; 기계의 동작수의 계수(자동저울 · 펌프 · 방직기의 북침 등) ; 생산물의 계수(윤전기의 인쇄매수 · 컨베이어 벨트의 운반물품 · 은행권 등)에 특히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계기는 일반적으로 길이나 단위수량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이다.

전자식 생산량계(electronic production counter) : 광전지(photoelectric cell)에 낙하하는 빔(beam)을 차단하여 생산물을 적산(積算 : count)하는 것. 기록장치는 빔을 통과하는 생산량의 수를 계산한다.

이 그룹에는 다중식 적산(積算)계기(multiple counter)도 포함한다(예: 동일 기계가 생산되는 수종의 제품계산에 사용하는 것).

또한 자동전화교환기의 전화사용회수 계수용의 전자(電磁)식 적산(積算)계기(electro-magnetic counter)도 이 그룹에 포함한다. 이들은 보통 전자석(electro-magnet)을 내장하여 전류의 펄스(pulse)가 권선을 통과할 때마다 기록 기구를(회전기록기형의 롤러 등) 한번 작동시키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

(3) 기계·전동기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積算)계기(counter)[타임미터(time meter)나 아워미터(hour meter)]

실제에 있어서는 작동시간의 검정용 회전 적산(積算 : count)계기이다.

(4) 입장객 적산계(entry counter)

박물관·공원·경기장 등의 입구에 있는 회전식 입구나 그 밖의 장치에 부착되어 있으며, 입장객의 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5) 빌리어드 미터(billiards meter)

스코어의 기록용으로 보통 수동식의 기계식 적산(積算 : count)계기(롤러형과 이와 유사한 것)이다.

경기시간 지시계이나 시간을 기초로 하여 지급요금을 지시하는 계기로서 시계 무브먼트(movement)에 의하여 동작되는 계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106호)**. 당구의 점수기[볼(ball)식이나 슬라이드식의 것]은 **제9504호**에 분류한다.

(6) 짧은 시간 단축 측정용 기기 : 시계형의 무브먼트(movement)[동기(同期)무브먼트(synchronous movement)를 포함한다]를 갖추지 아니한 측정기기는 제91류에서 제외한다. 전자식 임펄스 카운터(electronic impulse counter : scaler)도 이 호에 포함한다[예: 버스·기차 등에 탑승하는 승객 적산계(積算計 : counter)].

(7) 택시미터(taximeter)

일반적으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과 거리에 따라 정확한 요금을 지시한다.

(8) 주행거리계(mileometer)

수송수단용의 적산(積算)용계기(revolution counter)로서 보통 선(線 : linear) 거리단위(마일·킬로미터 등)로 검정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행거리계는 속도계(speed indicator)와 결합되어 있다.

(9) 보수계(pedometer)

이 계기는 시간식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대략의 거리측정에 사용한다. 매일보마다 바퀴의 열을 일단위씩 전진시키는 진자(pendulum)를 갖추고 있으며, 거리는 합계보수(合計步數)와 보폭(步幅)에 의하여 계산한다.

(10) 휴대용 적산계(hand-held counter)

이 계기는 보통 고정된 범주의 4단위 숫자 이하로 판독한다. 사용자는 버튼을 눌러서 표시부가 활동을 하게 하여 적산(積算 : count)한다.

(B)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속도계와 회전계는 회전·속도·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積算)회전계나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분당 회전수·분당 마일 수·시간당 킬로미터 수·분당 미터 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모터사이클·자전거·기관차 등)이나 기계(전동기·터빈·제지기계·인쇄기계·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

이 호로 분류하는 속도계와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열거된 원리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한다.

(1) 시계식(chronometric system)

측정기구는 시계 무브먼트(movement)와 결합되어 있다. 때로는 시간을 별개의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로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 이 경우에는 두 개의 기기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2) 원심식(centrifugal system)

스프링으로 지지(支持 : hold)되는 수직의 조속기(調速機)암(vertical governor arm)이 구동축으로 회전한다. 조속기(調速機)암으로 운반하는 한 쌍의 추(weight)는 원심력에 의하여 중심보다 외측으로 이탈하며, 그 거리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 변위(거리)는 지시계에 전달한다.

(3) 진동식(vibration system)

진동식은 증기 터빈(turbine)·펌프·압축기·전동기 등의 고속기계(高速機)에 사용한다. 기계의 프레임(frame)이나 베어링의 기계적 공진에 의하여 눈금을 매긴 리드(reed)가 기계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진동한다.

(4) 전자(유도)식[magnetic(induction)system]

영구자석을 구동축으로 회전시키면 자계(磁界) 내에 놓인 구리나 알루미늄의 원판에 와(渦)전류(eddy-current)를 발생한다. 이 전류는 자석의 회전속도에 비례한다. 이리하여 원판이 회전되나, 이 회전은 제어스프링으로 상당히 억제한다. 이 원판은 속도계의 지침에 연결되어 속도를 지시한다.

(5) 전기식(electrical system)

광전지(photoelectric cell)가 부착되거나 기계에 부착된 임펄스 발생기(impulse generator)로 조작되는 것

이 호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고정식이나 휴대식·단순이나 복합기능(예: 최고나 최저)·차동장치(두 개의 속도의 차를 퍼센트로 지시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으며, 누적계나 시간계나 도표기록장치가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동시에 속도·주행거리·작동과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C)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는 움직이는 기계를 마치 서서히 움직이거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관측할 수 있는 것이며 ; 또한 회전운동이나 왕복운동의 속도를 측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후자(속도측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로보스코프식 **회전속도계(stroboscopic tachometer)**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트로보스코프는 관측하여야 할 기구에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조사(照射)함으로써 마치 정지되어 있거나 서서히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관측할 기구를 연속적으로 조명하여 시야를 가로막는 광학장치(방사상의 한 개부터 수 개까지의 세공이나 창을 갖춘 원판)를 통하여 관측하거나 ; 암실에서 주기적으로 극히 단시간 조명(flash)에 의하여 관측된다. 회전체나 왕복운동체의 속도의 측정은 앞에서 설명한 원판의 속도나 섬광의 주기를 마치 정지 상태로 보이게 하여 확인한다.

연속조명(permanent illumination)의 원리에 의한 스트로보스코프는 주로 한 개부터 수 개까지의 창을 갖춘 시계 구동장치 · 속도 조정기 · 접안경 · 눈금 있는 드럼(보통 분단위의 회전수)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기적 조명(periodic illumination)의 원리에 의한 기능을 하는 스트로보스코프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비교하여 섬광장치가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가장 간단한 형의 것은 보통의 전구 · 섬광의 주기를 제어하는 속도조정기를 갖춘 모터 · 눈금판(graduated dial)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광전원으로 가스입방전관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가스방전 스트로보스코프는 구조가 보다 복잡하며, 따라서 사진이나 영화의 촬영에 사용하며 ; 이러한 것은 때때로 카스터(caster)나 롤러(roller)에 부착되어 있다. 회전체나 왕복운동체의 측정에 필요한 섬광은 그 운동체 자체에 의하여 제어한다. 동시성(synchronisation)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식 차단기 · 광전지 · 전자계전기 등을 사용한다.

사진용이나 영화용 카메라로서 스트로보스코프에 영구히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스트로보스코프는 특히 전동기 · 변속기어 · 섬유기계[스핀들 · 감기(reeling)용 기계 · 카드 · 셔틀 등의 부분품] · 제지기계 · 인쇄기계 · 공작기계 등의 관측이나 속도측정에 사용한다. 또한 의학 분야에서 성대(vocal cord)의 진동의 시험에도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90.3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
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 9030.1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 9030.2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
· 검사용은 제외한다)
- 9030.31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 9030.32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 9030.33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30.39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 · 개인
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계
(psophometer)]
 - 그 밖의 기기
-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 9030.84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9030.89 -- 기타
-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A)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이러한 기기는 과학적인 조사나 산업용(야금 · 석유의 시굴 등)으로 사용하며, 또한 생물학이나
의료용(방사성탐침과 접촉하여)으로도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전리조(電離槽 : ionisation chamber)를 갖춘 검출장치** : 전리조에 들어있는 두 개의 전극
사이에서 전위차가 발생한다. 방사선이 전리조에 들어갈 때 전리되는 이온은 전극에 흡인되며,
그 결과 일어나는 전위차(potential difference)의 변화를 증폭시켜 측정한다.
- (2) **가이거계수기(Geiger counter)** : 계수관 내의 전극 사이에 고(高)전위차가 지속되고, ; 입사
(入射 : incoming)되는 방사선으로 전리되는 이온은 가속되어서, 차례로 관(tube) 내의 기체가
전리된다. 이리하여 발생하는 임펄스(impulse)를 계수화한다.

이 호의 전리조(電離槽 : ionisation chamber)장치와 가이거계수기(Geiger counter)는 보통 전리조나 계수관·증폭기·전원장치·계수회로나 지시계기로 구성되며 이러한 모든 단위는 동일한 케이스에 장치되는 경우가 많다. 때에 따라서 전리조나 계수관을 제외한 모든 장치가 동일케이스에 있으나, 이러한 형의 것[완성시키기 전에 전리조나 계수관을 요하는 것]도 이 호로 분류한다(주로 완성장치로서), 이러한 단위별장치가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류의 총설에 의하여 분류한다.

상당한 시간(예: 24시간)의 합계방사선량 측정용의 전리조에는 보조증폭장치 등은 갖추지 않았으나, 전리조를 통과하는 방사선의 전량(全量)을 지시하는 극히 경량(輕量)의 지침(moving pointer)을 갖추고 있어서 이것을 현미경으로 읽는 식의 것이 있다. 이러한 전리조(ionisation chamber)(종종 만년필과 비슷한 형태인 것이 있다)는 그 자체 완성측정장치인 것으로 이 호로 분류한다.

섬광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계수기는 광전지와 전자증배장치로 만든 장치[광전자배증관(光電子增倍管 : photomultiplier)]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방사량이 일부의 결정(crystal)[황화아연·달륨활성옥화나트륨·안트라센(anthracene)·테트라페닐부타디엔(tetraphenyl-butadiene)을 포화시킨 플라스틱제]의 형광을 발하는 원리에 의하여 측정·검출되는 것이다. 결정(crystal)은 방사선원과 계수장치의 일방의 전극과의 사이에 놓이게 된다.

이 그룹은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1) **방사선 선량계(線量計 : dosimeter)**와 이와 유사한 엑스선의 강도(intensity)와 투과력(penetrating power)의 측정용이나 시험용의 방사선 기기
- (2) **우주선(cosmic radiation)**이나 이와 유사한 방사선의 측정용 기기
- (3) **“열전퇴(熱電堆 : thermopile)”중성자 검출기**와 중성자 검출기용의 관(tube)(붕소·3플루오르화붕소나 산소유형의 것·방사능핵분열 생성물을 이용한 것)이 결합된 **측정이나 검출용 기기**
- (4) 액체나 고체 섬광체가 결합된 **방사선 검사기나 검출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섬광계수기를 결합하여 이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의학적 진단을 위하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예: 감마 카메라(gamma camera)·섬광스캐너](제9018호)
- (b) 방사선원(原)(특히 인공의 동위원소)을 결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기기(예를 들면, 재료의 두께[시트(sheet)·라이닝(lining)이나 이와 유사한 것]·측정계기(포장내용량 감시 장치·저속 기류측정기(동위원소풍속계) 등(제9022호)

(B)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는 전기적 양(量)(전압·전류 등)의 급속한 변화를 관측하거나 기록하는데 사용한다. 이 기기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a) **더렐(Duddell)의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 보통 거울(mirror)을 갖춘 팽팽한 선의 루프(loop)로 구성되는 코일(coil)이 전자계 내에서 움직이도록 된 것. 이 주기적 현상은 직접 빛 유리판으로 관측하거나 사진용 테이프로 기록한다.
- (b) **연철형(soft iron)과 조각형(graver type) 오실로그래프** : 불변(不變) 자계(磁界) 내의 연철(軟鐵)의 대(strip)에 작용하는 코일을 갖춘 것. 한쪽 끝에 지침을 갖춘 경량의 봉(rod)을 스트립(strip)에 고정시켜, 이것이 현상을 추적한다(예: 초산섬유소가 도포된 테이프의 절단에 의해서).
- (c) **음극선관 오실로스코프(cathode-ray oscilloscope)와 음극선관 오실로그래프(cathode-ray oscillograph)** ; 음극선이 정전력(electrostatic force)이나 전자력(electro-magnetic force)에 의하여 편향되는 모양을 기록하는 것이다. 한 개부터 그 이상의 장치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기기는 주로 음극선관·피딩(feeding)용 장치와 변압기·증폭기·스캐닝(scanning)기구와 그 밖의 보조기구와 경우에 따라서 전자스위치로 구성된다. 기억장치가 결합된 오실로스코프[절연된 급속과도(過度) 현상(rapid transient phenomena)의 조사에 사용한다]는 음극선관과 연계된 수치관으로 장비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유형에서 신호의 상(image)은 음극선상에 계속 표시한다. 앞에서 설명한 두 번째 유형에서 신호는 기억장치에 기록되어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원상회복한다.

*
* *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ser)는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 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전기적 양(量)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며 또한 전리선·음파와 그 밖의 비전기적 양(量)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단, 방사선 검출기나 비전기적양(量)을 검출하거나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그 밖의 장치와 결합되어 사용될 때로 한정한다].

*
* *

이 호에는 과도(過度 : transient)현상 기록기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신호를 포착·기록하여 적당한 형태로 표시장치(예: 텔레비전 모니터)에 전송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논리분석기(logical analyser)”(반도체장치의 다수 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도 이 호로 분류한다.

*
* *

전기적 양(量)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에는 지시식(indicating)이나 기록식(recording)이 있다.

이 기기는 그 작동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수의 그룹으로 세분한다.

- (1) **가동코일형 기기(moving-coil instrument)** : 측정하여야 될 전류가 영구자석의 자계 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 코일로 통과하는 것. 지침은 이 가동코일에 고정되어 있다.
- (2) **가동철편형 기기(moving-iron instrument)** : 솔레노이드(solenoid)를 지침의 축에 부착된 연질(軟質)의 철편에 작용시킴으로써 지침을 편위시키는 것
- (3) **전류력형 기기(electrodynamic instrument)** : 측정하여야 할 전류를 고정코일과 가동코일로 통과시키면 가동코일이 고정코일의 자계 내에서 회전되는 것. 지침은 가동코일에 고정되어 있다.
- (4) **유도형 기기(induction instrument)** : 한 개나 수 개의 코일을 가진 전자석의 공극(空隙 : air gap)내에서 작동되는 원판이나 원통을 지침의 축에 부착시킨 것
- (5) **열전대형 기기(thermocouple instrument)** : 측정하여야 할 전류를 열전대의 열접점에 사용하는 열전선으로 통과시켜 그 기전력을 측정한다.
- (6) **전자작동형 기기(electronically operated instrument)** : 아날로그나 디지털 정보판독용으로 지침이나 광전자표시와 반도체기술을 이용한 것

이상의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이 호에는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한다(비교방식). 이 중에는 특히 **측정용 브리지(measuring bridge)**와 **전위차계(電位着計 : potentiometer)**가 있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한 개나 수개의 검류계·표준저항기·표준축전기·표준유도기·표준전지·변압기·변환기·스위치 등을 박스나 케이스 내에 장치시킨 것이다. 측정용 브리지는 종종 그 발명자의 이름을 따서 호칭하며[휘이트스톤(Wheatstone)브리지·톰슨(Thomson)브리지·앤더슨(Anderson)브리지·맥스웰(Maxwell)브리지·소티(Sauty)브리지·쉐링(Schering)브리지·콜라우쉬(Kohlrusch)브리지·윈(Wien)브리지 등]; 그밖에 비교단위에 의한 호칭방법(십자형브리지·더블브리지·T형브리지 등)이나 사용목적에 의한 호칭방법[임피던스(impedance)브리지·저항브리지·커패시스턴스나 연결브리지(capacitance or connection bridges)·만능(universal)브리지 등]이 있다.

다만, 분리하여 제시하는 변압기·표준저항기·표준축전기·표준유도자·표준전지 등; 또한 이어폰(헤드셋) [측정용 브리지형에서 시각영점지시계(visual null indicator)를 대신해서 사용한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류)**.

*
* *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I) **전류의 측정(measurement of electric currents)** : 특히 검류계나 전류계(암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II) **전압의 측정(voltage measurement)** : 전압계(voltmeter)·전위차계(potentiometer)·전위계(electrometer) 등을 이용한다. 고전압 측정에 사용하는 전위계는 정전형(靜電型)의 것으로서; 절연대 위의 구체(球體)나 판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전압계와 구별한다.

- (III) **저항(resistance)과 전도율(conductivity)의 측정** : 특히 오옴계(ohmmeter)나 측정용 브리지를 이용한다.
- (IV) **전력(power)의 측정** : 와트계(wattmeter)를 이용한다.
- (V) **정전용량(capacitance)과 인덕턴스(inductance)의 측정** : 측정용 브리지로 측정하며 패럿(farad)이나 헨리(henry)로 표시한다.
- (VI) **주파수의 측정** : 헤르츠(hertz)(주파수/초)단위로 눈금이 매겨진 주파계(frequency meter)를 이용한다.
- (VII) **자기장(wavelengths)이나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의 측정** : 전파계(wave meter)나 슬롯도파관 장치(slotted waveguide instruments)를 이용한다.
- (VIII) **위상각(phase angles)이나 역률(力率 : power factor)의 측정** : 위상계(phase meter)로 측정하며 역률(cos phi)로 표시되어 있다.
- (IX) **두 개의 전기량간의 비율의 측정** : 비율계(ratiometer)를 이용한다.
- (X) **자계(magnetic fields)나 자속(magnetic flux)의 측정** : 검류계(galvanometer)나 자속계(fluxmeter)를 이용한다.
- (XI) **재료의 전기적 특성이나 자기적 특성의 측정** : 히스테리시스 테스터(hysteresis testers), 투자율계(permeameter)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한다.
- (XII) **동기(同期 : synchronism)의 검정** : 동기(同期)검정기(synchroscope)(두 개의 주기적 현상간의 위상의 관계와 주파수의 차를 지시하는 계기)를 이용한다. 이러한 계기들은 “빠르게(fast)”와 “느리게(slow)”라는 표시가 다이얼(dial)에 포함되어 있어(관련 화살표와 함께) 인식이 가능하다.
- (XIII) **급속히 변화되는 전기적 양(量)의 측정과 기록** : 앞에서 설명한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나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를 이용한다.

*
* *

전기식 측정기기 중에는 다목적용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니버설 테스터(universal tester)”(예: 다목적 계기)로 호칭되는 전기식이나 전자식 기기로서 전압(직류나 교류)·전류(직류나 교류)·저항과 정전용량을 바쁘게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한다. 앞에서 설명한 전압계·전위차계·측정용 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

- (i) **임피던스 테스터(impedance tester)와 임피던스 브리지(impedance bridge)** : 전기 회로의 임피던스(impedance)를 측정하며, 또한 전기저항이나 인덕턴스(inductance)도 측정한다.
- (ii) **인덕턴스 브리지(inductance bridge)와 이와 유사한 장치** : 휘트스톤 브리지(Wheatstone bridge)의 원리로 링 인덕턴스(ring inductance)를 측정한다.

- (iii) **네퍼미터(nepermeter)와 데시벨 미터(decibel meter)** : 전화의 장거리 회선의 감쇠를 측정한다. 음량의 측정용 기기는 제9027호에 분류한다.
- (iv) **페이딩(fading) 지시계** : 보상기력식(補償器力式 : compensatory system)에 의하여 측정하는 네퍼미터(nepermeter)와는 달리 직접 페이딩(fading)을 지시한다.
- (v) **누화계(cross-talk meter)** : 전화회로에서 여러 가지 양(量)의 측정에 사용한다.
- (vi) **전송레벨지시계(transmission level indicator)**
- (vii) **노이즈레벨미터(noise level meter)** : 고주파선로에 사용한다.
- (viii)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s)** : 증계기를 통하여 증계되는 전화의 장거리 회선의 이득(gain)을 측정한다.
- (ix) **간섭측정장치** : 예를 들면, 장거리 전화회선의 잡음전압이나 인접한 고압회로에 의한 간섭(interference)을 측정한다.
- (x) **잡음전압계(psophometer)** : 선로잡음(line-noise) 측정 장치로서, 즉 전화회선에서 유발되는 전압 대신에 동일간섭(the same interference)을 일으키는 전력을 측정한다.
- (xi) **피크인디케이터(peak indicator)** : 전송회로[예: 장거리전화선·무선통신회로·단파(shortwave)용 링크]에서 발생하는 단락전압 피크(short voltage peak)를 기록하는 것이다.
- (xii) **반향계(echo meter)** : 반향을 네퍼(neper)나 데시벨(decibel)로 직접 독취하여 선로의 평형(line balance)을 유지시키는데 사용한다.
- (xiii)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복잡한 전송장치로 유발되는 고주파 만곡의 측정에 사용한다.

위의 기기 중의 일부의 것, 특히 전기음향측정용 기기는 네퍼(neper)나 데시벨(decibel)로 검정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이 호에 기술된 종류의 작동을 행하는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며, **진공관의 시험용이나 측정용의 기기(특히 무선용 진공관의 시험용의 것)**를 포함한다. 이 진공관의 시험용이나 측정용의 기기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의 스크린에 진공관의 특성 곡선(characteristic curve)을 영출(映出 : produce)하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 분리하여 제시된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것의 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가이거-뮐러 계수기(Geiger-Müller counter)나 비례계수기(proportional counter)와 함께 사용하는 전자식(電子式)의 **동시단위(coincidence unit)**, 결정(crystal)이나 플라스틱 모양으로 검출기에만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 부착되었거나 금속으로 외장된 **솔리드 신틸레이터(solid scintillator)**, 붕소·삼플루오루화 붕소·산소·핵분열(fissionable) 생성물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의 관(neutron detector tube)**



[소호해설]

소호 제9030.82호

이 소호에는 또한 집적회로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도 포함한다.

**90.31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10 - 균형시험기

9031.20 - 테스트벤치(test bench)

-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9031.49 -- 기타

9031.80 - 그 밖의 기기

9031.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나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것은 특히 **제외한다**.

(a) **제9005호**의 천체관측용 기기

(b) 현미경(**제9011호**나 **제9012호**)

(c) **제9015호**의 측량용 기기 등

(d) 수지(手指)식의 길이 측정용 기기(**제9017호**)

(e) **제9018호**의 내과용·외과용 등의 기기 등

(f) 재료의 기계적 성질 시험용 기기(**제9024호**)

(g) **제9026호**의 유량계(flowmeter) 등

(h) **제9030호**의 전기적 양(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전리선의 측정용이나 검출용 기기

(ij) 자동조절용 기기나 자동제어용 기기(**제9032호**)

(I)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A)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기계부분품의 균형시험용 기계(machine for balancing mechanical parts)(동적·정적·전자식 균형 장치가 부착된 것)** : 예를 들면, 전기자(armature)·회전자(rotor)·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연접봉(connecting rod)·프로펠러샤프트(propeller shaft)·휠(wheel)·플라이 휠(flywheel)

동적균형시험기(dynamic machine)에 있어서는 부분품을 두 개의 베어링 블록 위나 중심 사이에서 회전시켜 불균형을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기록반(recording plate) 위의 선도(線圖 : tracing of diagram)의 추적·스프링 균형의 원리 등].

정적균형시험기(static balancing machine)는 경사(傾斜 : tipping)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불균형을 눈금이나 다이얼(dial)로 측정한다. 이것은 부분품을 회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적균형시험기와 구별한다.

불균형(out-of-balance)은 균형추를 이용하거나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보정한다.

전자식 균형장치(electronic balancing device)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은 특수감응요소로 검출되어 증폭된다.

이 호에는 공작기계[예: 천공기(穿孔機 : drilling-machine)]를 결합시켜 오로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균형시험기(balancing machine)도 포함한다.

- (2) **테스트벤치(test bench)** : 엔진과 모터 · 발전기 · 펌프 · 속도계 · 회전계 등에 사용하며 프레임(frame)과 측정이나 검정용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 (3) **연료시험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화학 기기**[특히 석유의 옥탄가(octane index)나 디젤엔진 오일의 세탄가(cetane index) 측정에 사용한다] : 이 기기는 보통 내연기관, 발전기, 점화발생기, 가열저항기, 측정기기(온도계 · 압력계 · 전압계 · 전류계 등)로 구성한다.
- (4) **차량용 모터의 시험용과 조절용 기기** : 점화장치의 전 부분(코일 · 점화플러그 · 콘덴서 · 축전지 등) 검사용에 사용하며, 기화기(carburettor) 성능의 최고성 검사용(배기가스 분석에 의하여)이나 실린더에서의 압력 측정용으로 사용한다.
- (5) **면적계(planimeter)** : 설계도 · 도표 · 가측 등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장치에 결합된 추적점(tracing point)이 측정되는 면적의 윤곽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적분기(integrator) · 조화분석기(harmonic analyser) · 그 밖의 기기는 면적계(planimetric)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용량 · 관성 모멘트(moment of inertia) 등의 그 밖의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 (6) **머리 윤곽 측정기(head contour measurer)** : 모자제조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이를 천공하여 조작한다.
-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 · 측정 장치 · 전자 · 광전자 · 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 · 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 또한 이 호에는 기록식 비교측정기와 대량생산된 부분품을 비교측정기에 운반시켜 불량품을 검출하는 기구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9017호의 해설 Part(D) (4)항에 기술된 다이얼(dial)식 비교측정기(수동식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위의 제외규정(d) 참조).
-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 gauge)** : 정밀자의 검사용 · 높이의 검사용이나 그 밖의 제조 중인 공작물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 (9) **사인바(sine bars)와 조정대가 있는 사인바(adjustable table sine bar)** : 각도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 (10) **기포수준기(氣泡水準器 : bubble level)(다수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 : 측미(測微) 조정식 수준기(水準器)(micrometric adjustable level)[마이크로미터(micrometer)를 내장한 버블(bubble) 수준기] · 블록수준기(block level)[두 개의 수준기를 금속제의 프레임(frame)에 부착한 것으로 공학용에 사용하는 것] · 액체 수준기(연통관식 수준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수준기(水準器)를 **제외한다(제9015호)**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11) **경사계(clinometer)**[지침계나 십자선형·클라이노미터룰(clinometer-rule)·클라이노미터분도기(clinometer-protractors)]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클라이노미터(clinometer)로 불리는 것으로서 토지측량용의 기기는 **제외한다(제9015호)**.

- (12) **다림줄(plumb-line)**

- (13) **구면계(spherometer)** : 렌즈·미러·스펙터클렌즈(spectacle lens) 등의 구면의 굴곡을 측정하는 것이며, 주로 정삼각형의 각을 이루는 세 개의 침·눈금자·측미(測微 : micrometric)한 나사식의 축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경용 렌즈의 측정기에는 굴곡을 직접 지시하는 눈금 판이 부착되어 있다.

- (14)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

- (15) **다차원 측정기구**[좌표측정기(CMMs :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를 포함] : 기계의 여러 가지 부품을 수동이나 기계적으로 치수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16) **렌즈의 심출기(opticians' centring machine)** : 렌즈의 축과 중심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것.

- (17) **측미(測微 : micrometric) 표준측정기** : 마이크로미터(micrometer)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접촉식 지시계가 있는 고정된 테일스톡(tailstock)과 마이크로미터스크루(micrometer screw)가 있는 조정주축대로 구성된다.

-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 기계·다리·댐 등에 사용한다.

- (19) **방직용 섬유재료의 검사용 기기** : 예를 들면, 일정한 길이의 실(yarn)이나 슬리버(sliver)를 얻는데 사용하는 **실의 등급별 권취릴(yarn grading winding reel)[경사(經絲)릴(wrap reel)]**(인장조정기·계수기·벨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실의 연도(燃度)를 측정하는 토쇼미터(torsiometer)와 토쇼그래프(torsiograph)** ; **인장계(tensiometer)** [정경기·스풀권취기(spool winding)·방직기 등에 감기는 실의 장력 측정용] ; 드럼이나 보드에 감아서 **실의 균질성을 검사하는 기기**[보통 권취(捲取 : winding) 중의 간격을 검사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 (20) **표면완성가공 시험용 기기** : 표면상태 계측용으로 사용한다.

기계식이나 압축공기식의 계측기는 경질(hard) 접촉자나 공기분사(air jet)로 측정한다.

전기식에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의 픽업이 측정 면 위를 이동하여, 면의 요철(irregularity)을 전위(electric potential)로 변환시킨다. 픽업(pick-up)의 상하운동은 압전기결정에 의하여 전위(electric potential)로 변환되거나 간접적으로 축전기(capacitor)나 유도자(inductor)의 값(值 : value)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위(電位)로 변환된다. 이 전위를 증폭시켜 측정한다. 표준조도(粗度)면의 측정치(작은 금속판을 사용한다)와 비교하면 시료면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21) **기어(gear)시험기** : 예를 들면, 레버(lever)의 확대원리를 이용하여 기어의 윤곽·피치원 직경·톱니스페이싱(tooth spacing)·롤링 접촉(rolling contact) 등[평치차와 베벨기어(spur and bevel gear)의 경우]와 리드(lead) 등[나선형 기어(helical gear)와 웜기어(worm gear)의 경우]의 시험에 사용한다.

- (22) **점토 등의 수축률 측정용 기기**[시료는 소성(燒成 : firing) 과정의 측정을 위하여 소성(燒成) 중의 세라믹 노(ceramic furnace)에서 채취한 것](pyroscope) : 이 기기는 때로는 캘리퍼스(callipers)와 유사하나 임의적인 단위로 눈금이 매겨져 있다.
- (23) **불규칙면 측정장치(가죽 등의 표면)** : 광전 공정(photoelectric process)를 이용한다(균일하게 조명되는 유리판을 측정하여야 할 불투명 평면으로 피복하여, 그 투과도를 광전지로 측정한다).
- (24) **실(yarn)의 직경 측정장치** : 앞에서 설명한 (23)항에 기술된 광전 공정에 의하여 측정한다.
- (25) **압연 중의 금속의 시트(sheet)나 스트립(strip)의 두께를 연속적으로 측정 검사하는 장치**
- (26) **초음파 두께 측정 계기** : 두께를 재료의 편측(片側)만에 의한 관측으로 측정한다.
- (27) **재료의 흠(fault)·균열(fissure·crack)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 검출장치[금속의 봉(bar)·관(tube)·프로파일(profile)·스크루(screw)·침(needle) 등의 기계가공품 등에 사용한다]** : 측정은 자기의 변동을 음극선관으로 관찰하거나 투자율(透磁率 : magnetic permeability)의 변동을 계기의 지시나 초음파 이용에 의해 직접 판독하여진다. 후자의 그룹에는 **용접부 검사용 초음파장치**를 포함하며, 이 장치는 초음파가 통과되는 매체 내의 단층이 광선을 편향시키는 원리에 의한 것이다. 빔(beam)의 감쇠(attenuation)를 관측하거나, 반사법(echo method)에 의하여 결함을 측정한다. 관측에는 음극선관 스크린을 사용한다.
- (28) **시계나 시계부품의 검사용 기기** :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헤어스프링(hairspring) 시험기**
 - (ii) **진폭계(amplitude meter)** : 밸런스휠(balance wheel)의 진폭검사용의 것. 광선 빔(beam)이 운동시킴으로써, 차단되고, 광전지 위에 투사되어 진폭을 측정한다.
 - (iii) **오실로미터(oscillometer)** : 완전한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movement)의 시험용이나 검사용에 사용한다.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를 마이크로폰 위에 놓으면 시계의 똑딱똑딱하는 소리가 전위(電位 : electric potential)로 변환되며, 이것을 증폭시켜 두 개의 전극에 사용한다. 전극의 하나에는 종이를 만든 스트립(strip) 위에 기록을 천공하는 침(point)이 부착되어 있다.
 - (iv) **시계의 최종 검사기** : 앞에서 설명한 오실로미터(oscillometer)[시계를 마이크로폰(microphone) 위에 놓고 똑딱똑딱하는 소리를 기록한다]와 동일한 원리의 것이나, 다만, 음극선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가 부착되어 있다.
- (29) **응력(stress)과 왜력(strain)의 전기식 측정용 기기** : 이 기기는 다음의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 (i) 응력(stress)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하는 것[왜력게이지(strain gauge)][다만, “왜력계(strain gauge)”로 알려진 전기저항기는 **제8533호**에 분류한다].

(ii) 특별히 만든 전극 간에서 커패시티(capacity)가 변하는 것

(iii) 수정이나 이와 유사한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 전하(電荷)가 발생하는 것

이 그룹에는 수압기·압연기·재료시험기의 압축 응력(compression force)이나 인장 응력(tractive force)의 측정용과 하중시험(항공기)을 하는데 사용하는 **동력계**도 포함한다. 동력계는 보통 변형력을 받는 금속제 보디(body)(실린더·링 등)와 금속제 보디(body)의 어떤 변화를 기록하여 중량단위를 측정하는 측정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재료의 성질을 시험하는 동력계(dynamometer)는 **제외한다(제9024호)**.

(30) **로드셀(load cell)**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시켜 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

(31) **전자크로노그래프(electronic chronograph)와 전자크로노스코프(electronic chronoscope)** : 전기접촉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것. 회로(contact)가 폐쇄되는 사이에 고저항으로 부하되는 커패시터(capacitor)로 구성되며 시간단위로 검정하는 진공관 전압계를 사용한다.

(B)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

(1)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 가공되는 부분품의 치수를 표준품과 비교·검사하는데 사용한다. 측정자의 움직임은 광학기구로 확대한다[회전미러(revolving mirror)의 원리].

(2) **컴퍼레이터 벤치(comparator bench)** : 신장(伸長 : elongation)·길이·표면 등의 검사에 사용하며 ; 이 기기는 테이블·프레임(frame)·슬라이드 왕복대(臺)·두 개의 측정현미경으로 되어 있다.

(3) **메저링 벤치(measuring bench)** : 대형 부분품·드레드 게이지(thread gauge)·기어 커터(gear cutter)·선반용 나사가 있는 샤프트(shaft)·크로스 멤버(cross member) 등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프레임(frame)과 테이블·관측용 현미경·두 개의 측미(測微 : micrometric) 현미경과 투영장치로 되어 있다.

(4) **광파간섭계(interferometer)** : 평면의 검사에 사용한다. 빛의 간섭(light interference)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표준광선정반(定盤)(standard optical flat)과 간섭밴드(interference band)의 측정을 위한 측미(測微 : micrometric) 십자선을 넣은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 호에는 표준광선정반(제9001호)과 굴절률 측정용 광파간섭계(제9027호)를 **제외한다**.

(5)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다.

(6) **신속충격차동측정자(rapid impulse differential feeler)와 광학적관측기(optical viewer)**를 갖춘 장치 : 윤곽(profile)과 표면의 상태(conditions of surface)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

(7) **얼라인먼트 텔레스코프(alignment telescope)** : 작업대와 기계 슬라이드(machine slide)의 곧음성(straightness)의 검사용과 금속구조물의 측정에 사용한다. 조준식(collimation)과 자동조준식(auto-collimation)의 것이 있으며, 망원경과 조준기나 미러(mirror)로 구성되어 있다.

- (8) **광학식 자(optical rule)** : 면(plane)의 차(deviation)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며 ; 프리즘과 양양쪽 끝에 렌즈를 붙인 중공척(hollow rule)과 측정자를 내장시킨 접안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다.
- (9) **측미(測微 : micrometric) 판독기** : 공작기계의 테이블의 동작을 검사하는 것이며 ; mm의 단위로 판독하는 측미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 (10) **광학식 측각기(optical goniometer)나 각도 게이지(angle gauge)** : 완성가공 중의 치차의 치(齒)나 공구날의 각도 검사용의 것. 렌즈와 미러와 입사각을 읽을 수 있도록 눈금 판을 갖춘 광학장치나 거울과 조사접안경으로 형성되는 셔터기구의 두 가지가 부착되어 있다.
- (11) **포시미터(focimeter)** : 안경용 렌즈의 도수측정용

위의 각 기기는 다른 기계에 장착용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8466호에는 공작기계나 워터제트(water-jet) 절단기 위의 가공물이나 공구조정용 부착구를 분류하며, 눈금을 읽고 조정 작업 등을 하기 위한 광학기구를 갖춘 광학식 부착구[예: 광학식 분할대(割出臺 : dividing head)와 광학식 원형테이블]를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II)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윤곽투영기 : 매우 여러 가지 물품의 모양과 치수의 검사용[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조각·소형기계장치·스크루(screw)·스크루 탭(screw-tap)·체이서(chaser)용 등의 기어(gear)와 피니온(pinion)]이나 면(surface)의 시험용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윤곽투영기에 있어서는 램프로부터의 광(光)이 스테이지(stage) 위에 올려진 시료에 직접 닿기 전에 응축에 의하여 빔(beam)으로 집중한다. 시료는 여러 번 반사된 후 광선 속에 영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프리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투영기에 내장된 스크린 위에 최종적으로 투사(projected)한다. 윤곽투영기 중에는 표준품을 놓는 중간 스테이지(stage)를 갖춘 것도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 면적계용 암(planimeter arm)·다이얼컴퍼레이터(dial comparator)용 스탠드와 측정 테이블



[소호해설]

소호 제9031.41호

이 소호에는 또한 집적회로 검사용 광학식 기기와 집적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광학식 기기를 포함한다.

소호 제9031.49호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각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각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

90.32 -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 9032.1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 9032.2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 그 밖의 기기
- 9032.81 -- 액압식이나 공기식
- 9032.89 -- 기타
- 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7호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 제어용 기기 :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있는지에 상관 없다.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B) 전기적 양(量)의 자동 조절기기와 비전기적 양의 자동 제어기기 : 작동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 있다.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I)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장치 대신에 변화에 감응(感應)되는 간단한 장치[금속이나 바이메탈(bi-metal)의 막대(rod)·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나 벨로우(bellow)·부자(浮子 : float) 등]를 사용한다.
- (B)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장치·정지 장치·조작 장치

이 류의 주 제7호가목의 의미에 속하는 액체·기체·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기는 단일체(single entity)나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 형성하는 세 개의 장치로 구성된다.

어떤 기기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예정치에 도달될 때에 스위치에 의하여 직접 작동시킨다.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그 밖의 변량(變量: variable)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자동 제어용 기기는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펌프·압축기·밸브·노(爐: furnace)의 버너 등]로서 변량(變量: variable)[예: 탱크에서 측정된 액체나 방(room)에서 측정된 온도]을 지정치로 회복하게 하는 기기와 연결되며, 예를 들어 안전장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기의 작동이 제어되어 정지하도록 하는 기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 기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식·유압식·압축공기식이나 전기적 조절에 의해 원격 조절되는데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펌프나 압축기는 제8413호나 제8414호; 밸브는 제8481호 등). 자동조절기기가 명령을 수행하는 기기와 결합이 된 경우에는 전체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나 통칙 제3호나목에 의해 결정한다(총설 16부의 (III)과 제8481호의 해설 참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압력제어기(pressure controller)나 조정기(regulator)** : 이것은 **기체정류량장치(manostats)**로도 불리며, 주로 압력감응기·지시된 압력과 조정해야 될 압력과의 비교(예: 조정 가능한 스프링에 의하여)하는 조절장치·제어회로를 조작시키는 전기접점이나 작은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예를 들면, 모터펌프나 압력탱크에 부착된 콤프레서(compressor)를 제어하기 위해서나 압축공기식 밸브의 위치결정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액체나 기체의 유량·압력을 조정하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압력 조정기는 제8481호의 감압밸브(pressure reducing value)와 서로 다른 것이다 [때때로 “압력 조정기(pressure regulator)”로도 불린다].

- (B) **액면 조정기(level regulator)나 액면제어장치(level controllers)**(액면의 자동조정용)

플로우트형(float-type) 액면조정기에 있어서 플로우트(float)는 전기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격막(diaphragm)이나 자석이나 그 밖의 장치 위에 작용하며 이들은 스위치를 돌려서 펌프·밸브 등을 켜거나 끄는 것이다.

전극장치에 있어서는 액체를 땅에 접촉시켜, 조정회로의 일부를 구성시킨다. 액체의 표면이 전극에 도달하면, 회로는 차단되고 계전기(relay)는 작동한다.

- (C) **습도조절기(humidity regulator)** : 때때로 **습도조정장치(humidistat)**로도 불리는 것으로, 한증실(steaming cabinet)·노(爐: furnace)·공장·창고 등의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기이다.

그 조작은 모발다발(a bundle of hair)의 길이의 변화나 그 밖의 습기에 감응되는 어떤 소자의 변화에 의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신호 장치를 조작시키거나 습도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증기공급밸브(steam input valve)·급습기(humidifier)나 제습기(de-humidifier)·팬(fan) 등]를 제어하는 것이다.

- (D) **온도조절장치(thermostat)** :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그 주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온도의 변화에 감응하는 요소로 작동은 다음의 것에 의한다.

- (a) 바이메탈(bi-metal) 스트립(strip)의 모양 변화(직선·U자형·나선형 등) ;
- (b) 액체의 증기압(vapour pressure) ;
- (c) 액체나 금속봉(metal rod)의 팽창 ;
- (d) 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나 열전대(thermocouple)

바이메탈스트립(bi-metal strip)형 온도조절장치에 있어서 스트립(strip)은 플런저튜브(plunger tube)의 내측이나 케이스 속에 고정되어 있으며, 금속막대(rod) 형의 온도조절장치에 있어서 막대(rod)은 플런저튜브의 안에 부착되어 있다. 증기식이나 액체형에 있어서 감응 요소는 액체를 둘러싼 겹쳐진 격막(diaphragm)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격막·모세관 튜브·벌브(bulb)나 엘보(elbow) 장치로 구성되기도 한다.

(2) 검출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드럼·디스크나 그 밖의 기구

(3) 기계식·유체조절기식·전기식의 전달 장치에 의하여 주로 레버 어셈블리(lever assembly)·스프링(spring) 등과 밸브·전기스위치로 구성되는 제동장치나 작동장치. 이 장치는 증기나 온수의 흡입구 밸브·보일러 버너(boiler burner)·공기조절기·팬 등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신호나 장치를 일반적으로 원격 조작하는 것이다.

특히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thermostat)는 주택이나 그 밖의 건물 내·오븐(oven)·조절 기구·보일러·물 가열기·냉장장치·굴뚝이나 연도·증기장치나 캐비닛이나 그 밖의 공업 용이나 실험실용 장치의 온도조절용으로 사용한다.

(E) **온도조절기(temperature regulator)** : 전기식 가열장치(요리도구·석쇠·여과기 등)의 온도를 설정·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바이메탈스트립(bi-metal strip)이 있는데 이것은 전력회로의 분로저항기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 편향(編向 : deflect)될 때 스위치가 전력회로를 개폐하게 된다[“켜고(On)” “끄는(Off)”시간과 그로 인한 열 요소의 온도는 수동 조절하는 다이얼(dial)의 상태로 결정한다] ; “풀(Full)” 상태에서는 조립된 바이메탈(bi-metal)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며, 열 요소(heating element)가 계속적인 작동을 하게 한다(특히 초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온도를 온도조절장치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자동온도조절식(thermostatic)”이나 “서모스탯(thermostat)” 스티머(steamer), 캐비닛(cabinet) 등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b) 온도제어식 밸브(제8481호)

(F) **오븐(oven) 통풍 자동조절기(oven-draught regulator)** : 예를 들면, 중앙난방장치나 공기조절장치에서 온도·압력 등에 의하여 흡입되는 공기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이다.

(II)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거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A) **측정 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resistance probe)·열전대(thermocouple) 등] : 조절되는 변량(變量 : variable)의 실제 값을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B) **전기식 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 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기동장치 · 정지장치 · 조작 장치**(일반적으로 접점 · 스위치나 회로 차단기 · 방향전환 스위치나 간혹 단전기 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

이 류의 제7호나목의 의미에 속하는 자동조절기기는 앞에서 설명한 (A), (B), (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단일체(single entity)나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른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 함께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위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기식 측정 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 · 제9026호 · 제9030호**에 분류한다.

(2) 전기식 조절 장치는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로 분류한다.

(3) 기동 장치 · 정지 장치 · 조작 장치는 일반적으로 **제8536호**에 분류한다(스위치 · 계전기 등).

자동조절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식 · 압축공기식 · 유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actuator)는 조절 변량(變量)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 작동기는 아크 노(爐 : arc furnace)의 전극간 간격을 조정하는 클램프(clamp) · 보일러 · 노(爐) · 펌핑기계 등에서 물이나 증기의 흡수를 조절하는 전동벨브가 있다.

작동기(actuator)는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조정가능 클램프(clamp) : **제8425호**, 전동이나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 valve) : **제8481호** ; 전자기식 포지셔너(positioner) : **제8505호** ; 등]. 자동조절기가 작동기와 결합한 경우에 전체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나 통칙 제3호나목에 의하여 결정한다(제16부 총설 (III)과 제8481호 해설 참조).

전자식 조절기(electronic regulator)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한다[전자기계식(electro-mechanical)의 것이 아니다].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나 집적회로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양(量)(예: 볼트수 · 암페어수 · 주파수 · 전력)뿐만 아니라 그 밖의 양(量)[예: 분당 회전수 · 토크(torque) · 견인력(traction force) · 깊이 · 압력 · 유량 · 온도]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내연기관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압조절기나 전류조절기가 단일 하우징(housing)에 개폐기와 결합된 것 (**제8511호**)

(b)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제8537호**)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90.33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기기의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1) 이 류의 주 제1호에 언급된 물품. 예:
 - (a)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로서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것(제70류)
 - (b) 기계용·기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경화(硬化) 고무 이외의 가황(加黃) 고무 제품[예: 고무 개스킷·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것](제4016호), 가죽 제품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예: 가스 계수기용 가죽 격막)(제4205호)이나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 (c)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2) 그 자체가 제90류·제84류·제85류·제91류 중의 어느 특정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열거된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의해 분류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물품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진공펌프(제8414호)·탭(tap)이나 밸브(제8481호)·기어(제8483호)
 - (b) 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영구자석(제8505호)·일차전지(제8506호)·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축전기(제8532호)·저항기(제8533호)·계전기(繼電器: relay)(제8536호)·튜브나 밸브(제8540호)·광전지(제8541호)·고주파증폭기나 중간주파증폭기(제8543호)
 - (c) 제9001호나 제9002호의 광학소자
 - (d) 사진기(제9006호)·온도계와 습도계(제9025호)
 - (e)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제9108호나 제9109호)
- (3) 이 류의 특정기구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러한 물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관련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시계 유리(이들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나. 휴대용 시계의 체인(경우에 따라 제7113호나 제7117호로 분류한다)
 - 다.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물품(일반적으로 제7115호로 분류한다). 다만, 시계 스프링은 시계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9114호).
 - 라. 베어링(bearing ball)(경우에 따라 제7326호나 제8482호로 분류한다)
 - 마. 제8412호의 물품[탈진기(escapement)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 바. 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
 - 사. 제85류의 물품. 다만, 물품 상호간이나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나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의 부분품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5류).
-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위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로 분류한다.
- 이 류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란 밸런스휠(balance-wheel)·헤어스프링(hairspring)·수정진동자나 그 밖의 시간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는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이고, 폭·길이·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

국내주:

- 소호 제9102.11호·제9102.21호·제9102.29호·제9111.90호·제9113.10호에서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이란 이 류의 주 제2호 본문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을 위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 이 류의 주 제2호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소호 제9102.11호·제9102.21호·제9102.29호 중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총설

이 류에는 주로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에 관련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데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된 기기를 분류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시계(휴대용 시계와 스톱워치)·그 밖의 시계[보통의 좌중시계·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시계·자명종 시계·항행용 크로노미터(chronometer)·차량용시계 등]와 시각의 기록용 기기·시간의 간격을 측정하는 기기·타임스위치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류의 물품은 그 재료에 상관없이(귀금속을 포함한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장식되었거나 테를 두른 것도 포함한다(제9111호와 제9112호 해설 참조).

다른 물품[가구·램프·잉크스탠드·문진(paperweight)·라이팅패드(writing-pad)·담배통·라이터·핸드백·콤팩트·담배케이스·프로펠링펜슬(propelling-pencil)·지팡이 등]과 결합된 시계에 대한 분류는 이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단순히 그 내부를 조명하는 장치가 부착된 시계는 이 류에 분류한다.

각 호의 해설에서 언급한 제외규정 이외에 이 류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가. 해시계와 물(모래)시계(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나. 문자판 없는 뮤지컬 자동장치(기계적으로 새소리를 내는 것과 이와 유사한 것)와 뮤지컬박스(제9208호)
- 다.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가 없는 것으로 시계 형태를 갖춘 완구용의 시계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의 시계(제9503호나 제9505호)
- 라. 자동인형(automaton)과 그 밖의 동작하는 전시용품(쇼윈도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제9618호)
- 마.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시계는 주로 **무브먼트(movement)**와 **무브먼트용 용기**(케이스·캐비닛 등)의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기계식 시계의 무브먼트는 다음의 부분품으로 구성한다.

- (1) **보디(body)나 프레임(frame)** : 보통 지판(plate)과 브리지(bridge)로 구성한다. 지판(plate) [여기에 브리지(bridges)가 스크루(screw)와 핀(pin)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다]은 무브먼트(movement)의 기본적인 지지체이다. 어떤 보디나 프레임에는 본래의 브리지(bridge)와 지판 이외에 무브먼트의 어떤 부분[일(日)의 이운열(裏輪列 : motion work)·경보장치 등]을 지지하기 위한 1개나 그 이상의 추가 외판[예를 들면, 문자판·아래쪽 판 커버(lower plate cover)로 불리워진다]이 갖추어져 있다.
- (2) **무브먼트 구동장치** : 보통 추나 테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나 온도나 기압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
- (3) **전달장치[운열(輪列 : train)]** : 시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탈진기(escapement)에 구동장치를 연결한 일련의 치차열(toothed wheel)
- (4) **일(日)의 이운열(裏輪列)** : 분침과 시침의 동작을 연결하는 부분품이다. 문자판을 갖춘 무브먼트(movement)에 있어서의 일의 이운열은 일반적으로 문자판과 지판의 사이에 부착되어 있다.
- (5) **탈진기(escapement)** ; 시계의 진자나 밸런스 와 헤어스프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며 전달장치의 동작을 조정한다.
탈진기(escapement)의 일반적인 형은 앵거나 레버식·핀 팰릿(pin pallet)식·실린더식·디텐트(detent)식이다.
- (6) **조정장치** ; 이것은 구동기구에 의하여 생기는 동작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진자·밸런스휠(balance-wheel)과 헤어스프링(hairspring)·음차(tuning fork)·압전기결정소자나 시간의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어떤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7) **권양(眷揚)과 지침셋팅기구[푸쉬 피스(push piece)·드로우 피스(draw piece)·록킹바(rocking bar) 등에 의하여 구동한다]**

조립된 무브먼트는 문자판과 지침과 함께 용기나 케이스에 넣어져 있다.

균형차·탈진기(escapement)·전달장치는 조화하여 회전한다. 염가의 시계에 있어서는 지판(plate)과 브리지(bridge)의 금속 자체를 축받이로 하여 회전하며 고가의 시계는 축받이에 보석을 사용하여 마모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시계에는 시간을 치는 장치, 경보장치·일련의 차임(chime)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장치는 특별한 무브먼트를 필요로 한다.

기계식 시계는 손·전기나 자동으로 태엽을 감을 수 있다.

*
* *

이 류에는 전기식(전자식을 포함한다)의 시계가 있다. 예:

- (A) **건전지나 축전지를 이용하여 수분 간격으로 태엽을 감는 기구를 갖춘 시계.** 이러한 시계는 보통의 밸런스 휠(balance-wheel)과 헤어스프링(hairspring), 진자(pendulum)를 조정수단으로 하여, 전자석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태엽을 다시 감는 것이다.
- (B) **수시간마다 태엽을 감는 것으로 메인(mains)에 연결된 시계 :** 이러한 시계도 보통의 밸런스 휠(balance-wheel)과 헤어스프링(hairspring), 진자(pendulum)를 갖추고 있으며, 전동기(동기식·유도식 등)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태엽이나 추가 다시 감겨지는 것이다.
- (C) **건전지·축전지·메인(mains)를 전원으로 하는 진자(pendulum) 시계 ;** 진자(pendulum)의 진동을 전자기구에 의하여 지속하는 것이다.
- (D) **건전지나 축전지에 의하여 구동되는 시계 :** 전자회로에 의하여 진동을 지속하는 조정장치(음차·압전기결정소자 등)를 갖춘 것이다.
- (E)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시계 :** 이러한 시계는 주파수를 조정할 전류에 연결되고 동기(同期) 전동기와 전달장치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조정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전기시계의 기구에 관하여는 제9105호의 해설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어떤 전기시계는 원격조정에 의하여 정확한 시간으로 자기수정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
*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정의하는 이 류의 주 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a) **두께의 측정(measurement of thickness)**

무브먼트의 두께는 문자판 지지물의 외부평면[또는 표시부가 무브먼트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표시부의 가시표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반대편의 외부평면에까지의 거리이다[평면을 넘어나온 어떤 나사, 너트(nut)나 그 밖의 부착된 부분품은 고려되지 않는다].

(b) **폭·길이·직경의 측정(measurement of width, length or diameter)**

폭·길이·직경(대칭의 축에 의하여 결정한다)은 권양(捲楊)축(winding spindle)이나 크라운(crown)의 고려없이 측정한다.

91.01 -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1.19 -- 기타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 -- 자동권(自動捲)식

9101.29 -- 기타

- 기타

9101.91 -- 전기구동식

9101.99 -- 기타

제9102호에 대한 해설은 이 호에 준용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라서, 이 호의 휴대용 시계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계는 보석이나 천연·양식진주와 함께 세트가 되기도 하며 귀금속으로 만든 팔찌[보석을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귀금속으로 만든 덮개가 부착되기도 한다.

제71류의 주 제7호에 따라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이라 하는 것은 금속의 일면이나 양면 이상에 뿔접(soldering)·납접(brazing)·용접(welding)·열간압연·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된 시계로서 뒷면이 강철로 된 것은 귀금속을 박아넣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로 된 휴대용 시계와 같이 **제9102호**에 분류한다.

91.02 -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2.19 -- 기타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 -- 자동권(自動捲)식

9102.29 -- 기타

- 기타

9102.91 -- 전기구동식

9102.99 -- 기타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기계식과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 장치로서 착용하거나 휴대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한 종류의 것으로 시간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 시계,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시계, 브로치·반지 등에 부착된 시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탠드에 결합된 시계는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이 호에는 간단한 무브먼트를 갖춘 것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장치(즉, 단순히 시·분·초를 지시해 주는 것 이외에 특수한 기구를 결합한 것)를 갖춘 것이 포함되며, 예를 들면,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시계·자명종시계·시타(時打)시계(repeaters and striking watch)·자동시계·캘린더시계와 작업량을 지시하는 시계가 있다.

이 호에는 팬시용 시계나 특수한 형태의 시계도 분류한다. 예: 방수·방충(防衝 : shock-proof)이나 내자(耐磁 : antimagnetic)시계; 8일권시계; 자동권(自動捲)시계; 형광 문자판과 지침을 갖춘 시계; 초침이 중앙에 있거나 특수한 문자판을 갖춘 시계; 지침이 없는 시계; 스포츠 시계[예: 음향측심기(測深器 : depth indicator)가 있는 스킨다이빙용 시계]; 브라유(Braille)식 점자시계

크로노미터(chronometer) 시계는 서로 다른 상태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시험을 한 고도의 정밀시계이다. 이 그룹에는 **갑판시계**도 포함되나, 선박용 크로노미터(chronometer)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제9105호)**.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는 시간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이 시계는 보통 세 개의 침(시침·분침·초침)에 부가하여 두 개의 특수한 지침을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에 있는 초침은 일분당에 정확히 회전하고 용두(龍頭 : pendant)나 늑(knob)에 의하여 시발·정지·영으로 되돌려지며, 또 다른 하나의 지침은 중앙에 있는 초침이 몇 분간을 작동하였는지의 초수를 기록한다. 어떤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시계는 더 많은 지침을 가진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스톱워치(stop-watch)**도 포함한다. 스톱워치가 크로노미터(chronograph) 시계와 상위한 점은 스톱워치는 보통의 시침·분침·초침을 갖추고 있지 않고, 다만, 중앙초침(더 많은 초침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과 분기록용 침만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식 스톱워치에는 시각을 알려주는 부차적인 기능을 가진 것도 흔히 있다.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와 스톱워치는 1초의 1/5·1/10·1/100·1/1000의 눈금이 있다. 이러한 시계는 때때로 달리는 사람·자동차·소리 등의 속도·맥박수·기계의 출력 등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정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 시계는 시간기록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시계와 같이 제시된 **손목시계줄(wrist-strap)**(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계케이스와 시계케이스의 부분품(**제9111호**)·워치 무브먼트(movement)(**제9108호**나 **제9110호**)·시계줄·시계밴드·시계팔찌(**제9113호**)·무브먼트(movement)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보수계(步數計 : pedometer)(**제9029호**)
- (b)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3호**)
- (c)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의 계기반 클록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클록(**제9104호**)

91.03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 전기구동식

9103.90 - 기타

이 호에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가 갖추어져 있고 본래 시각을 표시하도록 만든 시계(자명종시계는 포함하나 **제9104호**의 시계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이 호에 있어서의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watch movement)”란 이 류의 주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밸런스 휠(balance-wheel)·헤어스프링(hairspring)·수정진동자나 그 밖의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계 무브먼트는 두께가 12mm 이하이고, 폭·길이·직경이 50mm 이하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a)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시계; 이러한 시계는 무브먼트의 형이나 두께에 관계없이 **제9104호**에 분류한다.
- (b) 이 호 해설의 서두에서 열거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계(자명종 시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전자시계·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며 두께가 12mm를 초과하거나 폭·길이·직경이 50mm를 초과하는 시계와 조정기구 없이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예: 동기(同期)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 이러한 시계는 **제9105호**에 해당한다.

자명종시계(alarm clock)는 특정한 지침에 의하여 미리 정한 시각에 타종하는 기구[보통 클록(clock) 케이스가 종의 역할을 한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타종 기구가 음악적인 기구로 대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가정용이나 사무실용의 시계(자명종 시계를 포함한다)로서 각(脚)·스탠드 등에 부착된 것
- (ii) 케이스를 갖춘 여행용 시계
- (iii) 켈린더시계
- (iv) 8일권 시계
- (v) 시간을 타종하는 시계
- (vi) 형광문자판과 지침을 갖춘 시계

이 호에서는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무브먼트(**제9108호**나 **제9110호**)·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

**91.04 -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
(clock)**

이 호에는 무브먼트(movement)의 어떤 형과 두께라도 가능하며, 차량용(자동차 · 오토바이 등) · 항공기용 · 우주선용 · 선박용 계기반 · 주행핸들 · 백미러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무브먼트와 케이스를 갖춘 모든 시계를 분류한다. 이러한 시계에는 보통 전기(대부분 전자)시계 · 자동권(自動捲)시계 · 기계식의 8일권시계가 있다.

이 호에는 보통의 지침 외에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침** · 분기록용 침 · 주행시간기록기를 갖춘 차량용의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시계도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분리하여 제시하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 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

91.05 - 그 밖의 클록(clock)

- 자명종시계
- 9105.11 -- 전기구동식
- 9105.19 -- 기타
- 벽시계
- 9105.21 -- 전기구동식
- 9105.29 -- 기타
- 기타
- 9105.91 -- 전기구동식
- 9105.99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클록(clock)을 분류하며 ;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반드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와 자명종 시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103호)**.

이 호로 분류하는 시계는 추·태엽·전기식·전자(電子)식으로 구동할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진자·균형차와 헤어스프링·음차(音叉 : tuning fork)나 압전기결정소자에 의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시계에는 벨(bell)이나 공(gong)을 치는 타종기구(1시간·30분·15분마다)나 공(gong)이 여러 개 달린 차임기구가 갖추어진 경우도 있다.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공중시계 ; 점포용·가정용 등의 시계 ; 적기(適期 : period)시계 ; 지방적인 특색을 장식한 시계[노이샬시계(Neuchâtel clock), 파리시계(Paris clock), 뻬꾸기시계(cuckoo-clock), 웨스터민스터 차임시계(Westminster chiming clock) 등] ; 꼭두각시시계 ; 동전으로 구동하는 시계 ; 천체 관측용이나 기상관측용시계 ; 자동권(自動捲 : self-winding)시계(태엽이 예를 들어, 온도나 기압 변화에 의하여 감겨지는 것) ; 자명종시계 ; 초침이 중앙에 있는 시계 ; 전자시계 ; 압전기 결정소자시계

이 호에는 또한 도시·공장·전화교환실·역·공항·은행·호텔·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시계장치를 구비한 시계**도 포함한다. 이러한 전기시계장치는 정밀하게 조정되는 **주(主) 시계(master clock)**와 원격조정에 의하여 구동되는 보조시계(secondary clock)로 구성한다. 주(主) 시계는 보통 기계적이거나 전기적인 무브먼트(movement)와 보조시계에 구동충격을 전달하기 위한 전기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보조시계**는 매분이나 30초마다 주 시계로부터 구동충격을 받아 시간과 분을 표시한다. 보조 시계에는 전달장치와 일(日)의 이윤열(裏輪列 : motion work)을 움직이고 작동하게 하는 회전이나 진동하는 전기자를 갖는 전자석을 갖추고 있으며, 주 시계에서 오는 매충격에 의하여 1분이나 30초마다 분침을 전진시킨다. 전달 장치는 전기적으로 감기는 스프링이나 직접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한다. 초를 표시하는 보조시계는 시침과 분침 외에서 중앙 초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주 시계는 분접촉장치 외에 매초마다 충격을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분침과 초침만을 갖추었거나 초침 하나만을 갖춘 보조시계(시계조정용 등)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 이러한 시계는 **제9106호**에 해당한다.

보조시계(secondary clock)는 옥내나 옥외에서 사용하며, 두 개 이상의 문자판을 갖는 수도 있으며, 테이블과 같은 평면에 설치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도 있다.

주(主) 시계(master clock)에는 때로는 시간기록기·순찰시계·전기절환(切換)장치·기록기·신호(벨·사이렌·램프 등)·수로부표·지상 조명등과 같은 그 밖의 전기기기를 제어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일반전원으로 작동되는 동기(同期: synchronous)시계와 압축공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축 장치로서 시간의 중계(relay)용과 동기(synchronising)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선박용 크로노미터(chronometer)나 이와 유사한 크로노미터**(즉, 고도의 정밀 시계로서 주로 선박용으로 설계·제작 되었으나 과학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크로노미터 시계보다 크며 상자에 고정되어 있고, 짐발(gymbal)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한번 감아서 2일이나 8일간 작동되며 일반적으로 크로노미터(chronometer) 탈진기·균력원추활차(均力圓錘滑車)·주(主) 스프링의 힘을 일정한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와 보유작동시간 지시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호에서는 별도로 제시하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무브먼트(**제9109호나 제9110호**)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에 분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갑판시계(**제9101호나 제9102호**)

(b)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의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형의 클록(**제9104호**)

91.06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90 - 기타

이 호에는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보조무브먼트나 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 시계의 무브먼트를 포함한다]나 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감속 기어가 달린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어떤 동작이나 작동의 결과로 시각을 기록하는 광범위한 기기와

(ii) 시간을 측정·기록·알리는 기기로서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러한 기기는 시·분·초를 지시하는 문자판을 갖고 있으나 이 호에 해당되는 시간기록기·순찰시계와 전서구용(傳書鳩用)시간기록기(pigeon-timer)와 같은 어떤 기기는 문자판을 갖추지 않은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 공장·작업장 등에서 종업원의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시간기록기로서 이러한 기기는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에 의하여 작동되는 일부인자기(日付印字機: clock movement)·해머·잉크리본(inking ribbon)을 넣은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이 카드를 기록기 안에 삽입하고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해머를 작동시키면 정확한 날짜·시간·분이 카드에 표기되며 이 카드에 의하여 자기가 근무한 시간수를 산출할 수 있다. 기계식 8일권시계와 전기시계가 가장 널리 사용하며 단독의 것·주시계에 연결된 것·그 자체가 주시계로서 역할하는 것도 있다. 마지막 경우의 주시계는 때로는 타종장치나 사이렌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제9105호 해설 참조).
- (2) **타임레코더(time-recorder)** : 앞 (1)에서 설명된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유사한 것으로서 년·월·일련번호·그 밖의 기호까지도 표시하는 시간기록기이며 ; 이러한 기기의 어떤 것은 작업시간 집계용 장치(예: 매일이나 매주)를 갖춘 것도 있으며 우편물이나 회계서류의 스탬핑(stamping)과 경비전표에 일부 등을 찍는데도 사용한다.
- (3) **순찰시계(watchmen's tell-tale)** : 이 시계는 보통 휴대식으로서 종이제의 다이얼이나 일부 장치에 작용을 해주는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를 갖고 있다. 순찰자는 특수한 열쇠를 이용하여 회전다이얼에 스탬핑(stamping)하거나 천공하거나, 종이테이프에 잉크로 인자하여 자기가 정기적으로 순찰한 것(시간·분·순찰함의 수)을 기록한다.
- (4) **서신전달 비둘기용 시계기록기(pigeon-timer)** : 경기종료 후 비둘기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록기는 시계·링용의 드럼·도착일시·분·초를 테이프에 프린트하거나 종이 테이프나 원판에 천공을 하여 기록하는 장치를 함께 갖춘 휴대식 케이스로 되어 있다.
- (5) **주파수조정용 기기(master frequency control instrument)** : 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시계·타임스위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기는 표준시각과 동기전동기시계의 시각과 양자의 시간차를 표시해 주는 다이얼을 갖추고 있다. 주로 시간차 지시용기구·주시계에 의하여 조정되어 표준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시계의 무브먼트와 동기전동기시계 무브먼트와 여러 가지의 전기접점과 신호장치나 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6) 전기회로의 개폐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시간의 현상의 발현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 : 이러한 타이머는 전력계의 검사와 인체의 반응속도의 측정 등에 사용한다. 주요한 부분품은 동기(同期 : synchronous)전동기·전자커플링과 초와 1/100초를 지시해 주는 다이얼을 갖춘 계기로 되어 있으며 ; 전체가 한 케이스 안에 넣어져 있다. 이러한 기기가 작동할 때는 동기(同期)전동기는 연속적으로 회전되고 현상의 발현기간 중에 계기에 결합한다.

시계형의 무브먼트가 없거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추지 않은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타이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

- (7) **스포츠용의 테이블형이나 스타디움(stadium)형의 타이머** : 도착시간이나 경기시간을 분과 초로 지시해 준다.

그러나 시계문자판을 갖춘 스타디움(stadium)시계는 **제외한다(제9105호)**.

- (8) 어떤 과정에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스톱클록(stop-clock)과 그 밖의 타이머** : 이러한 기기는 초단위 문자판과 소요분수 합계용 문자판·시동과 정지레버를 갖추고 있다.

- (9) **전화통화 시간기록용 타이머** ; 이러한 기기는 스톱클록(stop-clock)과 유사하게 작동하며 타종기구를 갖추고 있다.

- (10) **스포츠용 타임레코더(time-recorder)** : 동기전동기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수정발전기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서 1/100 초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며 출발이나 도착 순위도 기록한다. 이러한 기기는 사진에 의하거나 일정속도로 움직이는 종이 테이프에 인쇄한다든가 천공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한다.

스포츠용 시간기록기기의 보조기기[타이머용의 스탠드와 홀더(holder)·시동문(門)·광전지 장치·음향발전기·유선이나 무선송신기 등]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11) **단시간용의 공정용 타이머(process timer)** : 소요시간(보통 60분까지) 경과 후에 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 알람무브먼트(alarm movement)와 0~10, 0~30, 0~60의 숫자를 각인한 문자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공정시간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정하여진 시간에 타종기구의 구동대신에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공정용 타이머와 다른 타임스위치는 **제외한다(제9107호)**.

- (12) 주 시계(master clock)에 의하여 구동되는 **보조시계(secondary clock)**로서 분침과 초침이나 초침만을 갖춘 것(조정용 시계 등)

- (13) **빌리어드 미터(billiards meter)** : 경기시간이나 경기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지시를 표시해주는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를 갖춘 것

- (14) **체스플레이어용 타임클록(time clocks for chess-player)** : 시·분의 시각을 지시하는 문자판을 갖춘 두 개의 시계의 무브먼트와 무브먼트의 작동을 개시와 정지시키는 두 개의 버튼이나 레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서는 별도로 제시하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앞에서 설명한 기기용의 케이스(제9112호나 해당되는 각 호에 분류한다. 제9112호 해설 참조), 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시계용 문자판을 갖추지 않은 **제90류**의 기기[시계형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예: 조류기록기와 지진계(제9015호)·자기기압계와 온도계(제9025호)·압력계(제9026호)·가스·액체·전기의 적산(積算)계(제9028호)·회전속도계·생산량계·속도계·회전계·택시미터·보수계(步數計 : pedometer)·단시간측정용 계수기기(제9029호)·지도곡선계(제9031호)

- (b) 크로노미터(chronometer) 시계·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와 스톱워치(제9101호나 제9102호)

- (c) 메트로놈(metronomes)(제9209호)

91.07 -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시계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장치로서, 주로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日)이나 주(週)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장치를 분류한다. 이 호로 분류하는 이러한 장치는 시계의 무브먼트[보조나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 시계용 무브먼트를 포함한다]나 동기(同期 : synchronous)전동기(감속기어가 달린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를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타임스위치(time switch)는 조명회로(공공장소·상점의 창·계단·조명간판 등)·가열회로(온수기 등)·냉동장치·펌프·2중요급전력계 등의 제어에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는 주요부분으로서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同期 : synchronous)전동기·문자판(지침의 유무에 상관없다)·시간조정장치(레버와 핀)·구동용의 계전기와 스위치와 정류자로 보통 구성되어 있으며 터미널을 갖춘 케이스와 함께 넣어져 있다. 문자판은 보통 시간이 표시되는데 일과 월까지 표시된 것도 있으며 ; 주위에 있는 레버나 핀으로 소정의 시간에 접촉장치를 작동시킨다.

타임스위치는 온도조절장치·압력조정기·액면조정기 등에 의하여 작동이 시작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기기**[텔레비전 수신기·다리미·세탁기·빌리어드(billiard) 테이블의 전등 등]의 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 동전을 넣을 때 점등되며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의 작동으로 점멸하는 스위치, 동전투입수량에 의해 정해지는 간격기(間隔機)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하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위의 장치용의 케이스(**제9112호**나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제9112호 해설 참조)·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

91.08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전기구동식

9108.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9108.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8.19 -- 기타

9108.20 - 자동권(自動捲)식

9108.90 - 기타

이 호에는 케이스가 없이 조립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즉,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분류한다. 이 무브먼트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주요한 형태가 있다.

- (1) 기계식 무브먼트 ;
- (2) 밸런스-스프링 형의 전자식 무브먼트 ;
- (3) 곱힘공명기[음차(tuning fork)]를 갖춘 전자식 무브먼트 ;
- (4) 아날로그시간 표시부(지침)를 갖춘 수정 무브먼트 ;
- (5) 전자(電子)식의 디지털 시간표시부를 갖춘 수정 무브먼트(LED나 LCD)

아날로그 시간표시부를 갖춘 기계식이나 전자식 무브먼트는 문자판이나 지침없이 설치될 수 있다. 디지털 시간표시부를 가진 전자식[고체상태(solid state)] 무브먼트에서, 디스플레이셀은 무브먼트의 필수적 부분품이며 ; 디스플레이 셀이 없는 무브먼트는 작동할 수 없어서 이 호에서 의미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조립품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호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watch movement)”란 이 류의 주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밸런스휠(balance-wheel)·헤어스프링·수정진동자나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러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는 두께 12mm 이하 폭·길이·직경이 50mm 이하의 것에 한한다. 이들 무브먼트는 주로 제9101호부터 제9103호까지의 시계에 사용하며, 이 류의 그 밖의 물품과 결합되거나 다른 류의 기기(측정이나 정밀기기·보수계(步數計)·폭발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무브먼트(제9109호나 제9110호)와 제8412호의 스프링 작동원동기는 제외한다.

이 호의 무브먼트는 연마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니켈을 도금한 것·로듐(rhodium)을 도금한 것·은장한 것·금장한 것·바니시(vanish) 도장한 것 등이 있다.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에 동력을 주는 전지나 축전지는 이 호로 분류한다(전지나 축전지를 설치했는지에 상관없다).

91.09 -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10 - 전기구동식

9109.90 - 기타

이 호에는 클록(clock)형의 조립된 무브먼트(movement),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아날로그 시간 표시장치(지침)를 가진 무브먼트의 경우에는 문자판이나 지침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의 무브먼트는 주로 제9104호부터 제9107호까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이나 다른 류에 열거된 기기(측정기와 정밀기기·계기·폭발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8412호**의 탈진기(脫進機)를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어 없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 구동식이나 추구동식의 모터 등(예: 뮤지컬 박스의 구동에 사용하는 것)
- (b)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의 해설 참조)

따라서 이 호에는 특히 밸런스휠(balance-wheel)·헤어스프링·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조정기구에 의하여 조정되고 두께가 12mm 초과하거나 폭·길이나 직경이 50mm 초과인 무브먼트; 진자(振子)시계용 무브먼트; 전기시계용 무브먼트[조정기(regulator)가 있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보조시계용 무브먼트·동기(同期 : synchronous)시계용 무브먼트 등이 있다]를 분류한다.

이 호로 분류하는 동기(同期 : synchronous)시계용과 보조시계용의 무브먼트는 **반드시** 동기(同期) 전동기나 전자석 이외에 1변류·2변류·3변류와 4변류·분류와 시류와 같은 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달장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별도로 제시하는 전자석과 동기(同期) 전동기는 축의 속도를 조정하는 감속기어가 있는 것인지는 상관없이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에는 연마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니켈을 도금한 것·로듐을 도금한 것·은장·금장·바니시 도장한 것 등이 있다.

**91.10 -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9110.12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10.19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9110.90 - 기타

무브먼트 세트(chablon)는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구성요소의 **완전한 세트**로서, 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이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식 표시부 무브먼트의 경우에 문자판과 지침은 포함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불완전한 기계식 시계의 무브먼트는 문자판·지침·권양(卷揚 : winding) 스피들[예: 탈진기(脫進機 : escapement)나 배럴 브리지(barrel bridge)] 이외의 부분품이 결여되어 부착된 무브먼트를 의미한다.

불완전한 전(全)전자식 시계의 무브먼트는 배터리(예: 표시부·전자회로의 부분품이나 그 구성요소) 이외의 부분품이 결여되어 부착된 무브먼트를 의미한다.

기계식 표시부를 갖춘 불완전한 전자(電子)식 시계의 무브먼트는 문자판·지침·세팅 스피들(setting spindle)·배터리(예: 전자회로나 전자회로의 부분품, 모터) 이외의 부분품이 결여되어 부착된 무브먼트를 의미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는 판(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판)·브리지(bridge)·전달장치·일(日)의 이윤례(裏輪例 : motion work), 권양(捲揚 : winding)·세팅기구·자동력권양장치·캘린더기구·크로노그래프·알람 등과 같은 추가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시계의 무브먼트의 조립하지 않은 부분품이다[탈진기·밸런스휠(balance-wheel)·헤어스프링이나 그 밖의 조정장치·메인 스프링·문자판이나 지침은 없다]. 이러한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는 태엽통(barrel)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91.11 -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91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111.80 - 그 밖의 케이스

9111.90 -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9101호나 제9102호의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회중시계·손목시계·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 등[무브먼트(movement) 없이 제시하는 것으로서 유리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B) **다음에 열거된 케이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1) **케이스의 보디** : 즉, 케이스의 본체. 이러한 본체는 뒷덮개에 경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으며 회중시계에 있어서의 케이스 본체도 중간덮개와 유리를 끼울 수 있는 덮개용의 경첩을 갖추고 있다.
- (2) **펜던트·워치보우(watch bow)**(회중시계용)와 **부싱(bushing)**이 함께 케이스 본체에 용접되어 있다.
- (3) **중간덮개(dome)** : 무브먼트 보호용의 내부 덮개로서 보통의 시계에는 없다.
- (4) **베젤(bezel)** : 시계 유리를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시계유리를 지지하는 가장자리에 특수한 홈이 파여져 있다.
- (5) **뒷덮개(bottom)** : 시계유리의 반대쪽에서 시계를 밀폐하는 것이다. 보통의 시계는 단 한 개를 갖고 있지만 헌터(hunter) 시계는 뒷덮개와 유사한 두 번째의 덮개(**커버**)를 갖고 있어 유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손목시계용의 케이스는 펜던트(pendant)나 워치보우프로퍼(watch bow proper)는 없지만 시계줄을 달 수 있는 **돌출부**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돌출부는 수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고정식이나 스프링 구동식의 **봉(bar)**을 포함한다. 여자용 손목시계의 케이스에는 돌출부는 없지만 끈을 달기 위한 **클로오(claw)**가 붙여 있다.

손목시계의 케이스에는 케이스 본체와 뒷덮개의 단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뒷덮개와 베젤(bezel)이 각각 중간덮개의 일부를 이루고 있거나, 베젤과 케이스의 본체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고급시계의 경우에는 무브먼트가 처음부터 **보호용 중간덮개** 안에 봉입되어 있다.

시계 케이스와 그 부분품은 그 구성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강(鋼)제·니켈제 등으로서 연마한 것·크롬도금한 것·은장한 것·금장한 것]이 많으며, 귀금속제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나 플라스틱제·아이보리(ivory)제·마노(agate)제·자개(mother-of-pearl)제나 귀갑(tortoise-shell)제의 것도 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장식(기계로 회전시켜 세공한 것·조각한 것·부각된 것·천연이나 양식 진주·천연이나 인조나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 등으로 가장자리를 도포한 것)된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단순한 보호용의 시계 커버나, 시계용 유리가 아닌 것 ;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b) 제15주 주 제2호에 규정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시계 케이스용 스프링을 포함한다) (**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
- (c) 클록(clock) 케이스와 이 류의 다른 물품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제9112호**)

91.12 -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 케이스

9112.90 - 부분품

이 호에는 클록(clock) 케이스와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를 분류하며 ;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면, 자명종시계 · 선박용 크로노미터(chronometer) · 차량용 시계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 타임레코더(time-recorder)나 타임스탬프 · 시간침(분타이머 · 초타이머 등)이나 이 류의 그 밖의 클록(clock)용의 케이스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유리가 있는지와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의 클록(clock)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고 과학용기기 · 전기계측기기 등에 사용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케이스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타이머케이스 · 타임레코더(time-recorder)나 타임스위치의 케이스도 때에 따라서는 이 종류의 케이스가 된다] ; 이러한 케이스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로 분류하는 케이스에는 여러 가지 형의 것이 있으며 ; 보통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 · 목재 · 플라스틱 · 가죽 · 귀갑(龜甲 : tortoise-shell) · 자개 · 대리석 · 설화석고(alabaster) · 도자 재료 · 얼룩마노(onyx) · 마노(agate) · 아이보리로 만든 것이 있다. 또한 천연이나 양식 진주, 천연 · 합성이나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장식된 것, 의장 · 조각 · 작은 조각상 · 동물의 상 등을 결합시킨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베즐(bezel) · 프레임 · 대 · 스탠드 · 각(脚)과 같은 클록(clock) 케이스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별도로 제시하는 보통 유리로 만든 보호용 커버(**제7020호**)

(b)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클록(clock) 케이스용 스프링을 포함한다](**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c)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제9111호**)

91.13 - 휴대용 시곗줄 · 휴대용 시계밴드 ·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9113.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113.90 - 기타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휴대용 시곗줄 · 휴대용 시계밴드 · 휴대용 시계팔찌(즉, 팔목에 시계를 조이는 모든 장치)를 분류한다.

휴대용 시곗줄 · 휴대용 시계밴드 · 휴대용 시계팔찌는 어떠한 재료인지에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예: 비금속(卑金屬) · 귀금속 · 가죽 · 플라스틱 · 방직용 섬유재료], 이러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명백히 장식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 호에는 또한 어떠한 재질에 관계없이 휴대용 시곗줄 · 휴대용 시계밴드 · 휴대용 시계팔찌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그 밖의 부착장치[넥 체인(neck chain) · 펜던트 밴드(pendant band) · 워치체인(watch chain) · 링(ring) · 브로치(brooch) 등](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b)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버클과 버클걸쇠(**제7115호**)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버클과 버클걸쇠(**제8308호**)
- (c) 휴대용 시계와 함께 제시하지만 부착하지 않은 휴대용 시곗줄 · 휴대용 시계밴드 · 휴대용 시계팔찌 (**제9101호**나 **제9102호**)

91.14 -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30 - 문자판

9114.40 - 지판과 브리지(bridge)

911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열거한 것 **이외의** 모든 시계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a)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제외하는 부분품

(1) 추·시계용 유리·워치체인·볼베어링(ball bearing)과 베어링볼(bearing ball)(예: 자기권양 시계용)

(2)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예: “스크루(screw)[브리지(bridge)·용두(龍頭)·문자판·톱니장치·클릭(click)·앤드 스톤 캡(end-stone cap)이나 인덱스 디스크·요크(yoke)·세팅레버 등]·테이퍼핀(taper pin)·클록체인(clock chain)·문자판용 숫자(제15부)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일반적으로 제7115호)

이러한 부분품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시계용 스프링(메인스프링·헤어 스프링 등)은 이 호로 분류한다.

(b) 이 류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는 부분품[예: 제9108호나 제9109호의 완전한 무브먼트와 조립 무브먼트·제9110호의 무브먼트세트(movement set)·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이나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제9111호나 제9112호의 케이스와 제9113호의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

위의 (a)나 (b)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완구·계기나 측정기기·정밀기기)에 모두 적합한 부분품(스프링·전달장치·보석·지침 등)은 이 호로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다만, 시계용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부분품[예: 타임 레지스터(time-register)용의 인쇄장치나 합산장치와 제9106호나 제9107호의 물품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부분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서는 시계 부분품의 블랭크(blank)로 인정되는 물품을 포함하나, 시계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속편[예: 지판·브리지(bridge) 등으로 선반으로 절삭하거나 어떤 형태로 거칠게 절단만 하고 천공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등]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시계 부분품에는 연마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니켈을 도금한 것·로듐을 도금한 것·은장한 것·바니시(varnish) 도장한 것 등·보석을 붙인 것이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계 부분품을 분류한다.

(A)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의 부분품(구조의 복잡성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프레임(frame)** : 지판(과 어떤 추가적인 판)·브리지(bridge)[태엽통·중심륜·삼변륜·사변륜·밸런스 휠(코크)·탈진기·셋팅 휠(setting wheel) 등의 것]
- (2) **구동기구(driving mechanism)** : 메인스프링·태엽통·태엽통 덮개·배럴 아머(barrel arbor)와 톱니장치·클릭스프링

- (3) **윤열(輪列 : train)** : 중심륜과 중심륜 피니온 · 삼변륜과 삼변륜 피니온 · 사변륜과 사변륜 피니온
- (4) **일(日)의 이륜열(裏輪列 : motion work)** : 캐논 피니온(cannon pinion) · 분륜 피니온(minute wheel pinion)과 분륜 · 시륜(hour wheel)
- (5) **탈진기(escapement)**[앵커식 · 레버식 · 핀 팰릿(pin pallet)식 · 실린더식 · 디텐트(detent)식 등] : 탈진륜(escape wheel)과 피니온 · 레버 · 팰릿 스테프(pallet staff) · 롤러(roller) · 팰릿 스톤 · 임펄스핀(impulse pin) · 실린더
- (6) **조정기(regulating device)** : 밸런스 · 밸런스 스테프 · 헤어스프링[평면형, 브레게(Bréguet)형, 실린더형] · 음차(tuning fork) · 스테드(stud) · 콜릿(collet) · 조정기 · 인덱스스터드(index stud) · 엔드 스톤 캡(end-stone cap)이나 인덱스디스크(index disc) · 조정스프링 · 로워 캡 주얼 엔드피스(lower cap jewel end-piece)[내(耐)충격 장치용의 특수 부분품을 포함한다].
- (7) **태엽감는 기구(winding mechanism)과 시각맞춤기구(setting mechanism)** : 용두(龍頭 : crown) · 용두감기와 피니온 · 클러치휠(clutch wheel) · 세팅휠(setting wheel) · 크라운 래칫휠(crown ratchet wheel) · 크라운 휠 코어(crown wheel core) · 요크(yoke)(로킹바 : rocking bar) · 세팅레버(setting lever) · 세팅레버 스프링과 요크 스프링(yoke spring)
- (8) **전자식 무브먼트의 부분품** : 휴대용 시계의 회로, 예를 들면, 인쇄접속자가 정열된 절연기관과 프린팅 이외의 방법으로 만든 그 밖의 구성요소[예: 코일(coils) · 축전기 · 저항기 ·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것으로서 집적회로를 함께 갖춘 경우도 있다.
- (9) **플랫폼 탈진기(platform escapement)** : 지판 · 브리지(bridge) · 탈진기 · 밸런스휠(balance-wheel) · 헤어스프링과 시계의 무브먼트의 조정기로 구성되며 윤열(train)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러한 것은 조정되는 탈진기와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것인지 조립되지 않은 것인지에는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조립한 플랫폼 탈진기는 시계의 무브먼트(타임레지스터 · 타임스위치 등)를 사용하는 전 기기류에 결합되어 사용하기도 하며 간혹 소형시계나 자명종시계에 결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B) 시계나 자명종시계 무브먼트(movement)의 부분품

이러한 무브먼트 부분품의 대부분은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의 부분품과 원칙적으로 유사하지만 그보다 대형이다.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 특유의 부분품에는 진옥(weigh drum) · 진자(pendulum) · 보정진자[수은 · 인바스탐(invar stem) 등] · 크러취(crutch) · 버즈(verge) · 버즈휠(verge wheel) · 반동식 탈진기 · 직진[또는 그램(Graham)] 탈진기(escapement) 등 · 독립 와인딩키(winding key)를 포함한다. 자명종시계 무브먼트의 부분품에는 고착된 와인딩키(winding key)와 세팅용 손잡이를 포함한다.

(C) 타종장치의 부분품

- (1) **자명종 시계의 타종장치(striking work of alarm clock)** : 정지구(stop or detent) · 각목(刻目)한 환관(notched collar) · 방출륜(release wheel) · 탈진륜(escape wheel) · 인덱스 스테프(index staff) · 팰릿(pallet) · 타종 해머 등
- (2) **클록(clock)의 타종장치**[록킹 플레이트(locking plate)형 · 래크(rack)형 등] : 드럼(drum)이나 배럴(barrel)과 배럴휠(barrel wheel) · 로킹플레이트(locking plate) · 그레이트휠(great wheel) · 핀휠(pin wheel) · 3변륜(third wheel) · 워닝휠(warning wheel) · 플라이(fly) · 디텐트(detent) · 레버(lever)나 플라이스프링(fly spring) · 리피터랙(repeater rack) · 스네일(snail) · 해머(hammer) · 리프팅 피스(lifting piece) · 아버(arbor) · 플라이휠(fly wheel) · 개더링 팰릿(gathering pallet) · 랙(rack) · 볼(ball) · 공(gong) · 차임(chime)

(D) 보석

이 범주에는 가공된 석(보석) 즉, 정형(turned) · 절단 · 연마 · 천공 등이나 장착[세팅이나 (screw)]된 것에만 한하여 포함한다. 따라서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자른 보석은 제외한다(제71부). 시계용의 보석은 보통 극히 작고 직경과 두께가 각각 2mm와 0.5mm를 초과하는 것은 드물다.

시계 제조에 사용하는 주된 석은 천연이나 합성의 루비·사파이어와 가닛(garnet)(석류석)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한다. 값싼 시계에 있어서는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석대신에 금속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계용 보석은 지지되는 부분품의 명칭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중심륜용 보석·삼번륜용 보석·사면륜용 보석·탈진륜용 보석·팰릿스태프(pallet staff)용 보석 밸런스 휠용 보석이다. 원통형 선회축의 베어링은 천공된 보석이나 천공된 보석과 고품보석(solid jewel : end-stone)으로 되어 있으며 원추형의 공동(空洞 : cavity) 보석으로 된 것도 있다.

레버식 탈진기를 갖춘 시계에는 베어링으로 사용하는 둥근 보석 외에도 특수한 모양의 세 개의 보석, 즉 두 개의 팰릿(pallet)석[팰릿(pallet)의 각 단말에 부착된 사용 보석]과 한 개의 진석(振石)(보통 롤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반원이나 삼각형의 단면으로 된 보석)이 부착되어 있다.

보석의 삽입은 손으로 하거나 부착된 보석을 사용하기도 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압축에 의하는 것이 있다.

(E) 문자판(dial)

문자판(dial)은 시·분·초를 지시해 주는 디비전(division)이나 숫자를 각목한 판으로서 평면이나 곡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자판은 보통 은과 금으로 도금한 것·페인트 도장한 것·산화피막처리나 그 밖의 처리를 한 황동제의 것·에나멜을 도포한 동제·금제나 은제의 것, 때로는 지제·유리제·플라스틱제·도자제의 것도 있다. 숫자(figure)와 명각(名刻 : inscription)은 여러 가지의 방법(전사·착색·각인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문자판은 형광성 수자나 기호를 가지기도 한다.

문자판은 금속제의 스크루(screw)·핀·외환(外環 : outer ring)에 의하여 지판(또는 “다이얼 플레이트(dial plate)”)로 불리는 추가 외판)에 고정되어 있다.

(F) 지침(hand)

지침은 시·분·초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용의 특수한 지침과 자명종시계 등 용도의 지침도 포함한다. 시계 지침에는 평면이나 곡면으로 된 것이 있으며, 철강제·황동제·구리제로서 일반적으로 연마된 것·산화피막처리를 한 것·니켈을 도금한 것·크로뮴을 도금한 것·은이나 금을 도금한 것·래커를 도장한 것이 있으며 ; 때로는 금제의 것과 골제의 것도 있다. 형광성지침은 방사성염(방사성토륨·메소토륨 등)을 기본재료로 한 화합물로 충전된 “윈도우(window)”를 가지고 있으며, 지침에는 문자판의 형식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다수의 형의 것이 있다.

제 92 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나. 제85류나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나 그 밖의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닛 속에 결합되거나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 다. 완구용품(제9503호)
 - 라. 악기 소제용 브러시(제9603호),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것(제9620호)
 - 마. 수집품이나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2. 제9202호·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채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적정한 수량의 범위 안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며,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해당 악기와 같은 호로 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 제시되는 제9209호의 카드·디스크·롤은 해당 악기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며, 그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총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악기(제9201호부터 제9208호까지)

(B)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09호)

어떤 악기[피아노·기타(guitar) 등]는 전기사운드 픽업(sound pick-up)과 증폭장치를 갖춘 것도 있으나 ; 전기장치 없이도 보통형의 악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류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전기장치 그 자체가 악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거나** 악기와 같은 캐비닛 안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18호)**.

전기식이나 전자(電子)식 장치가 없이는 연주할 수 없는 전기식이나 전자(電子)식 악기(제9201호의 자동피아노를 제외한다)는 제9207호에 분류한다(관련 해설 참조). 따라서 제9207호에는 예를 들면, 정전(靜電)식·전자(電子)식·이와 유사한 형식의 기타(guitar)·오르간·피아노·아코디언·카리용(carillon)을 분류한다.

이 류의 기기는 그 구성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결합한 것도 있다.

제18부
제92류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9202호의 현악기 연주용의 활(궁)과 채(plectra)와 제9206호의 타악기용의 타봉(머리부분이 부드러운 타봉을 포함한다)과 맬릿(mallet)이 해당 악기와 함께 적정한 수량으로 제시하고 사용하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해당 악기와 함께 분류하고 제9209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기와 함께 제시하는 제9209호의 카드, 디스크, 롤(roll)은 별개의 품목으로 취급되어 이러한 악기의 부분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아래 해설에서 특별히 포함하는 제외규정 외에 이 류에는 다음 것도 **제외한다**.

- (a) 전자뮤지컬모듈(**제8543호**)
- (b) 사용한 재료의 특성·제품의 조작성·음질의 부족·그 밖의 특징에 의하여 명백하게 완구로 인정되는 악기(**제95류**). 예를 들면, 완구로 된 마우스오르간·바이올린·아코디언·트럼펫·드럼·뮤지컬박스
- (c) 수집품(**제9705호**)(예: 역사적이나 민속적 의미를 갖는 악기)이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92.01 -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 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9201.20 - 그랜드 피아노

920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피아노(piano)**(건반과 해머로 치는 현을 갖춘 것으로서 전기 사운드 픽업과 증폭장치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즉 :

(a) **업라이트 피아노(upright piano)** : 음향판 위에 현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줄을 비스듬히 교차시켜 켄길 때에 베이스 현이 나머지 현과 엇갈린다.

(b) **그랜드 피아노(grand piano)**(콘서트형과 베이비 그랜드형) : 넓게 펼쳐진 케이스에 수평으로 설치된 현이 있다.

이 그룹은 **자동피아노(automatic piano)**를 포함한다(건반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천공된 롤(perforated roll)에 의하여 연주되는 것이며 기계식 · 압축공기식 · 전기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식 피아노와 피아노를 연주할 때 다른 악기의 음향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피아노에 부착되는 전자식 악기는 **제9207호**에 분류한다(이 류 총설 참조).

(2) **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예: 스피넷(spinet)과 클라비코드(clavichord)]**



[소호해설]

소호 제9201.10호와 제9201.20호

이들 소호에는 **자동피아노(automatic piano)**도 포함한다.

92.02 -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 · 바이올린 · 하프)

9202.10 - 활을 사용하는 것

9202.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활을 사용하는 악기(instruments played with a bow)

이러한 악기의 주요한 예로는 **바이올린(violin)** · **비올(viol)**과 **비올라(viola)**(후자의 것은 보통의 바이올린 보다 약간 크다) · **첼로(violoncello)**와 베이스비올(**bass-viol**)와 **더블베이스(double bass)**가 있다.

(B) 그 밖의 현악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기는 현악기** : 손가락이나 나무 · 아이보리(ivy) · 귀갑(tortoise-shell) · 플라스틱 재료 등의 작은 조각으로 정돈된 현을 순간적으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만도린(mandolin)**(배면 중간이 불룩한 나폴리 만도린 · 플랫만도린 · 만돌라 등)

(b) **기타(guitar)**

(c) **저먼 류트(german lute)**(만도린의 일종)

(d) **밴조(banjo)**(드럼스킨으로 제작된 평복을 갖추고 원형평판의 배면을 갖는 목이 긴 악기)

(e) **우쿨렐레(ukulele)**(목이 두꺼운 소형 기타)

(f) **치더(zither)**[또는 **시더(cither)**] : 사다리꼴에 가까운 납작한 사운드 박스와 보통 금속으로 된 다수의 현을 가지고 있다.

(g) **발랄라이카(balalaika)**

(h) **하프(harp)** : 손가락으로 통기는 현악기로서 삼각형의 틀과 음계별 길이의 현을 갖고 있다.

(2) **그 밖의 현악기. 예:**

(a) **에올리언 하프(aeolian harp)** : 정원 등에서 연주되며 사운드 박스에 부착된 다수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바람이 있는 곳에 놓으면 자연스러운 화음을 낸다.

(b) **침발로(czimbalo)** : 강(鋼)제의 현이 설치된 틀을 갖고 있으며 머리부분이 부드러운 해머로 쳐서 연주하는 것으로서 집시의 오케스트라에 사용한다.

사운드가 전자식으로 증폭되는 현악기[특히 기타(guitar)]는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 다만, 사운드박스(sound-box)가 없는 기타(guitar) 같은 전자식 현악기는 **제9207호**에 분류한다(이 류 총설 참조).

[92.03]

[92.04]

92.05 -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 · 아코디언 · 클라리넷 · 트럼펫 · 백파이프)[페어 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10 - 금관악기

9205.90 - 기타

이 호에는 **제9208호**[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음향신호기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관악기를 분류한다. 이러한 악기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관악기로 생각되지만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금관악기(brass-wind instruments)

“금관(brass-wind)”이란 악기의 구성 재료라기 보다는 관현악단의 특수 분야에서 사용하는 악기의 음질에 관한 것이다.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끝이 종과 같이 벌어진 테이퍼(taper)관형의 금속(놋쇠 · 양은 · 은 등)악기로서 ; 다양한 각도의 코일 모양으로 된 악기를 포함한다. 절형의 마우스피스 · 악기의 입에 무는 주둥이가 부착되어 있고, 보통 밸브로 조작한다. 이러한 악기에는 코넷(cornet) · 트럼펫(간단한 트럼펫과 오케스트라 트럼펫 등) · 뷰글(bugle) · 색스혼(saxhorn) · 바리톤과 베이스뷰글(bass bugle) · 봉바르동(bombardon)[베이스튜바(bass-tuba)] · 베이스 수자폰(sousaphone) · 트롬본(밸브나 슬라이딩형) · 오케스트라 혼[예: 프랑스 혼(French horn)]과 관현악단에서 사용하는 밸브가 없는 혼(예: 수렵용 혼)을 포함한다.

(B) 그 밖의 관악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keyboard pipe organ)**(교회형). 건반의 움직임이 파이프에 전자적이나 기계적으로 전달되는 관악기이다.

이 호에는 콘솔(console)과 오르간 케이스(오르간이 들어 있는 나무 몸체로서 보통 장식되어 있다)도 포함한다. 단, 오르간과 붙어 있을 경우로 한정한다. 분리되어 있으면 **제외한다(제9209호)**.

오케스트리온(orchestron) · 거리 오르간 · 건반이 붙어 있지 않은 유사한 관악기로서 자동적으로나 수동으로 연주되는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9208호)**. 전자 오르간은 **제9207호**에 분류한다.

- (2) **하모늄(harmonium)과 금속 리드(reed)는 있는 건반악기** : 그러나 파이프(pipes)가 없는 것

- (3) **아코디언(accordion)과 이와 유사한 악기 · 콘서티나(concertina) · 반도네온(bandoneon) · 발구름 아코디언(foot-blown accorion)**

이 호에는 전자 아코디언은 **포함되지 않는다**(이 류의 일반 해설과 **제9207호**의 해설 참조).

- (4) **구금(mouth organ)(하모니카)**

- (5) **“목관(wood-wind)”악기** : 이러한 악기는 주로 건(key)과 링(ring)이 부착된 구멍을 갖춘 관[목재나 리드 · 금속 · 플라스틱 · 에보나이트(ebonite) · 유리로 된 것]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악기는 보통 리드(reed)로 소리를 낸다. 이 그룹에는 플루트 · 리코더 · 적(笛 : fife) · 통소 · 오보에 · 클라리넷 · 앙글리시호른(cors anglais) · 바순(bassoon) · 색소폰과 사뤼소폰(sarrusophone)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오카리나(ocarina)[금속이나 진흙으로 만든 작은 알형의 것으로 플루트(flute)와 같은 소리를 낸다]와 슬라이딩 휘슬(sliding whistle)[금속이나 에보나이트(ebonite)제]을 포함한다.

- (6) **그 밖의 취주(wind)악기**[예: 백파이프(bagpipe) · 브레통파이프(Breton pipe) · 뮈제트(musette) 등이 있으며, 바람통이나 가죽이나 방광으로 만든 자루, 세 개부터 다섯 개까지의 관(한 개의 관으로 선율을 연주하고 다른 파이프로 저음을 낸다)으로 구성된다]

92.06 -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타악기(percussion musical instruments)는 서로 유사한 물체끼리, 봉(stick)이나 이와 유사한 기기로, 맨손으로 치는 악기이다. 이러한 악기는 전체적으로 “드럼(drum)”으로 불린다.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악기는 다음의 것이 있다.

(A) 가죽을 늘려서 만든 것. 예:

- (1) **소고(tabor)와 탬버린(tambourin)**
- (2) **드럼(drums)[측면이 얇은 드럼·저음드럼·큰 드럼(big drum) 등]** : 이러한 드럼은 양단을 신장된 양피나 소우피로 덮은 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원통으로 구성되며(양두드럼), 한 개나 두 개의 보통의 봉이나 가죽을 씌운 두부가 있는 봉으로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
- (3) **팀파니(timpani)와 케틀드럼(kettle-drum)** : 양피로 덮은 속이 빈 구리로 만든 반구로 구성된다(적당한 사이즈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보통 지상에 놓고 사용한다). 이러한 악기는 일정한 음조로 조정되며 봉으로 쳐서 소리를 낸다.
- (4) **방울이 달린 탬버린(tambourin with jingles)** : 가죽을 덮은 테(륜)로 구성되며 방울이나 구리로 만든 텅(tongue)이 부착되어 있어 탬버린을 흔들어서 소리를 내거나 손바닥·손가락 등으로 쳐서 소리를 낸다.
- (5) **툼툼(tom-tom)**

(B) 그 밖의 타악기. 예:

- (1) **심벌(cymbal)** : 일반적으로 두 개를 마주친다든가 두 개를 다같이 비벼서 소리를 내는 원판으로서 ;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의 심벌즈를 머리부분이 부드러운 봉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것도 있다.
- (2) **징(gong)**(예: 중국식 징) : 보통 가죽이나 펠트 문치를 무거운 봉의 끝에 부착하여 두들기는 금속판이다.
- (3) **트라이앵글(triangle)** : 강봉(steel rod)을 정삼각형의 모양으로 구부린 것으로서 쇠막대기로 쳐서 소리를 낸다.
- (4) **징글링 조니(jingle johnny)**[중국 파빌리온(Chinese pavilion)·터키 크레센트(Turkish crescent)] : 방울과 작은 종이 부착된 것으로서 악기가 설치된 지주를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
- (5) **캐스터네츠(castanets)** : 목재·골재·아이보리제의 요면이나 패각 모양의 소형 악기로서 ; 손가락에 고정시키거나 손잡이를 달아서 마주쳐서 소리를 낸다.
- (6) **목금(실로폰 : xylophone)** : 음계순으로 길이가 다른 일련의 소형 목제판을 두 개의 지지물에 배열고정시킨 것으로 막대기로 쳐서 연주한다.
- (7) **메탈로폰(metallophone)** : 실로폰과 유사한 것으로서 목제판 대신에 좁은 금속제판[강(鋼)이나 두랄루민(duralumin)제]으로 되어 있다 ; (실로폰과 메탈로폰은 간혹 다같이 테이블의 아래쪽에 금속으로 만든 공명용 판이나 판을 부착한다). 이 호에는 **유리판(glass plate)**을 사용한 이와 유사한 악기도 포함한다.

- (8) **첼레스타(celesta)**와 이와 유사한 타악기 : 보통의 차임(chime)과 대체성 있는 타악기로 사용한다. 이러한 악기는 외관상 페달과 단음장치를 갖춘 소형의 피아노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건반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식 해머로 특수한 두꺼운 강판을 쳐서 소리를 낸다.
- (9) **벨 · 벨의 세트 · 차임과 튜블러벨(tubular bell)**[프레임에 달아맨 일련의 관(管)으로서 해머나 맨손으로 친다]
- (10) **마라카스(maraca)**와 이와 유사한 악기 : 속이 빈 종이나 관으로 되어 있으며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
- (11) **“클라베스(claves)”** : 일조의 경목제의 막대기로 되어 있다.
- (12) **플렉사톤(flexatone)** : 손잡이에 부착된 금속판과 판의 양측에 부착된 두 개의 목제의 구(balls)로 구성된다. 이 악기를 흔들면 구가 금속판에 부딪혀서 진동하며 음조는 엄지손가락으로 판을 구부려서 조정한다.

위에 설명한 악기는 때로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무도악단에 있어서는 큰 드럼을 치는 머리부분이 부드러운 봉은 페달로 조작되며 그 외에도 드럼에는 심벌 · 징(gong) · 목관(벨이 부착되었거나 실로폰 모양의 것이 장치된 목제의 공명상자) 등이 부착되어 있다.

공회당에서 음악연주용으로 사용하는 **카리용(carillon)**은 이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전자(電子)식 타악기는 **제9207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문이나 탁상용의 벨(bell)과 공(gong) · 도어차임(door chime) 등으로서 악기로 볼 수 없는 것(**제8306호**나 **제8531호**)
- (b) 시계용의 차임과 그 밖의 타종기구(**제9114호**)

92.07 -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코디언)

9207.1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9207.90 - 기타

이 호에는 **전기적(electrically)[전자적(電子的 : electronically)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음을 내거나 증폭을 하는 악기를 분류한다(즉, 어떠한 악기가 그 악기에 부착된 진동장치로 약한 음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전기식이나 전자식 구성 요소가 없이는 보통 들을 수 있는 연주가 불가능한 악기). 이러한 악기는 전기식의 사운드 픽업장치와 증폭장치를 부착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와는 다르게 피아노 · 아코디언 · 기타(guitar)는 그러한 장치가 없더라도 보통 악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주가 가능한 독립된 악기이다. 전기구동식의 자동피아노는 **제외한다(제9201호)**.

이 호에 해당되는 악기는 보통 다음과 같은 각 부분이 기초가 된다.

(A) 전자(電磁)식 음향발생기(electro-magnetic generator)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하는 시스템의 하나를 예를 들면, 발생기는 일정 속도로 구동하는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에 플렉시블 커플링(flexible coupling)으로 연결된 구동축을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크기의 기어는 구동축에 따라서 조를 지어 배열되어 있고 각 기어는 “음륜(tone wheel)”으로 불리우는 기어를 구동한다. 악기가 주요부에 연결되면 동기(同期 : synchronous)전동기는 기어의 직경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음륜(tone wheel)을 회전시킨다. 일단에 한 개의 코일을 갖춘 영구자석이 각 음륜옆에 평행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음륜이 회전하면 음륜의 선단에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붙어 있는 치가 자석의 극 밑으로 통과하며 ; 이로 인하여 자계 내에 변화가 생기며 코일의 약전류에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미리 주파수가 정하여진 약전류는 전기적으로 증폭되고 확성기에 도달한다.

이러한 원리는 주로 “오르간(organ)”형의 악기에 사용한다.

위와 다른 시스템인 하모늄(harmonium)형의 것은 “프리리드(free-reed)”가 영구자석의 극을 가로지르며 그러한 진동은 자석에 감겨진 코일의 자석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전기적으로 증폭하여 확성기에 전달하는 것이다.

(B) 정전(靜電)식 음향발생기(electrostatic generator) :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다.

- (1) **신장선(stretched wire) 음향발생기** : 신장선에 전류가 통과할 때 해머로 치면 진동이 생기며 그 근방의 신장선과 금속부분품(stud)의 사이의 용량에 변화를 일으켜 준다. 그러한 용량의 변화는 정확히 선의 진동에 비례하므로 이를 증폭하면 충실히 재생된다.
- (2) **진동리드식 음향발생기(vibrating reed generator)** : 전류가 신장선 대신에 리드(reed)를 통과한다.
- (3) **가변축전식 음향발생기(variable-condenser generator)** : 콘덴서(capacitor)가 모터에 의하여 일정 속도로 회전한다.

(C) 전자관[electronic valve(또는 tube)] 발전식 음향발생기로서 가스방전관 발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D) **광전식 음향발생기(photoelectric generator)** : 천공원판을 투과하는 광선이 광전지에 투사하는 것으로서 디스크스크린(discscreen)에 정확하게 계산된 수의 구멍을 열어 놓으면 적당한 전류의 변화를 얻게 되며 이것을 증폭하면 원하는 음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악기들의 어떤 것은 전자(電磁)식·정전(靜電)식·전자(電子)식·무선전기식·광전(光電)식의 피아노·오르간·아코디언·카리용(carillons) 등으로 호칭되나 대부분이 등록된 상표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악기가 단순히 음전을 변환함으로써 대부분의 악기가 내는 음을 충실하게 재생을 하게 된다. 그러한 악기가 단독적인 음조를 계속 내는 것은 단음기(monophone), 한번에 여러 종류의 음조를 내는 것은 다음기(多音器)(polyphone)(예: 오르간)라고 불리워진다.

이러한 악기 중에 어떤 것은 단독으로 연주되며 ; 어떤 것은 보통 피아노에 부착되어 연주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호의 악기는 오른손으로 연주하고 보통의 피아노는 왼손으로 연주한다. 이 악기는 피아노와 함께 제시되는지 따로 제시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의 악기의 연주에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식이나 전자(電子)식기기(특히 증폭기와 확성기)는 그 자체가 악기와 함께 조립된 것이 아닌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적절한 각 호에 해당한다(**제85류**). 다만, 악기의 일부로서 같은 캐비닛 안에 갖추어져 있거나 악기와 결합되는 것은 운송의 편의상 별도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해당 악기와 함께 분류한다.

이 호에는 한시간·반시간 등마다 자동적으로 치는 전자식 차임을 갖춘 보통의 시계(시각을 나타내는 문자판을 갖춘 것)는 **포함되지 않는다(제91류)**.

92.08 -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 · 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 뮤지컬박스

9208.90 - 기타

(A)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악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뮤지컬박스(musical box)** :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movement)로서 상자나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 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부는 편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따라서)인데 ; 실린더가 회전하면 편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으로 만든 설(tongue)에 접촉함으로써 설이 진동하며 음조를 낸다. 주요부는 판 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에 의하여 회전한다. 어떤 형의 것은 실린더가 상하로 변화를 주는 금속제 반(sheet-metal disc)으로 대치되어 있다.

뮤지컬장치와 결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실용적이거나 장식적(예: 클록(clock) · 소형목제가구 · 인조꽃을 담고 있는 유리화병 · 도자제의 작은 알갱이 모양)인 물품은 이 호에서 가리키는 의미의 뮤지컬박스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품은 뮤지컬 장치와 결합하고 있지 않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또한 전자뮤지컬모듈은 내장하고 있는 손목시계 · 컵 · 인사용카드와 같은 물품도 이 호의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들 물품은 이러한 모듈을 내장하고 있지 않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 (2)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예: 오케스트리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 어떤 페어그라운드오르간은 두 개의 아건반(dummy keyboard)을 부착한 대형의 악기로서 건반의 하나는 피아노 건반의 방법으로 금속을 연주하고 다른 하나는 파이프를 조절하며 ; 그러한 것은 그 이외에도 기계식의 활로 연주되는 캣거트(catgut)로 만든 현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악기는 드럼 · 심벌즈 · 아코디언 등과 결합된 것도 있으며 이에 의하여 오케스트라와 같은 효과를 준다. 이러한 악기는 주로 유원지나 박람회장 등에서 사용하며 수동으로나 동력으로 구동되며 천공된 롤이나 카드에 의하여 연주되기도 한다.
- (3)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이러한 악기는 구리로 만든 편을 세트한 배럴(barrel)(또는 실린더)을 포함하는 케이스로 구성되며 핸들을 회전하면 편이 목제나 금속제 파이프의 밸브를 조작한다.
- (4)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보통 바구니에 넣어진 소형의 자동 악기이다. 바구니 저부의 스프링 구동식(태엽식) 모터가 한 세트의 피스톤을 동작시키면 풀무에 의해 의음(modulated note)이 생겨 울게 되며 모형새(조)의 두부와 동체를 동작시키는 것이다.
- (5) **뮤지컬소(musical saw)** : 활이나 펠트를 두부에 부착한 해머로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특수한 강(鋼)으로 만든 날을 가지고 있다.
- (6) **그 밖의 진기한(fancy) 악기** : 예를 들면, 딸랑이와 입으로 부는 사이렌

이 호의 약기와 함께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카드·디스크·롤은 항상 제9209호에 분류한다.

(B)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어떤 종류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과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1) 데코이 콜(decoy call)과 의성발음기 등 :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조작하는 소형의 물품으로서 조수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조수를 유인하는 경기에 사용한다.

(2)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를 하는 기구. 예:

(i) 각적(horn)과 호각(call horn) : 뿔·뼈·금속 등으로 만든 것

(ii) 휘슬(whistle)(입으로 부는 것) : 금속·목재 등으로 만든 것으로 신호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도어벨·테이블벨·자전거용 벨 등(제8306호나 제8531호)

(b) 밸브 조작식의 각적(horn)과 경적(warning horn)(예: 차량용의 것)·선박용 사이렌·휴대용이나 수동식의 옥상에 고정된 사이렌(구성 재료에 의해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제16부나 제17부에 분류한다)

(c) 자동차나 자동차용의 전기식 신호기기(경우에 따라서 제8512호나 제8531호에 분류한다)

92.09 -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 - 악기용 현

- 기타

9209.91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9209.92 --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209.94 --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209.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박절기(metronome)·소리굽쇠(tuning fork)·조율관(調律管 : pitch pipe)

이 그룹에는 악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든 간에 박절기(metronome)·소리굽쇠·조율관(調律管)을 분류한다.

박절기(metronome)는 연주되는 곡목의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도록 설계 제작된 소형의 기계식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의 상자에 넣어져 있으며 종이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그 주요부분은 하단이 회전하는 박자봉의 동작은 봉의 뒷면에 있는 계기에 의하여 빠르게나 느리게 조절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박절기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은 전기접점을 갖추고 있다.

소리굽쇠는 진동할 때 일정한 소리를 내는 보통 소형의 U자형 금속봉이다. 이 그룹에는 사운드 박스에 금속으로 만든 설(tongue)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해머로 쳐서 소리를 내는 대형의 콘서트홀용 음차도 포함한다.

조율관(調律管)은 입으로 부는 것으로서 한 개나 여러 개의 리드(reed)와 파이프(pipe)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음조(4나 6)를 낸다.

이 그룹에는 의료용의 소리굽쇠(특히 청력 검사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진동을 내는 것도 있으며 여러 개의 기기와 함께 케이스 안에 넣은 것도 있다)와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관측용 등의 소리굽쇠를 포함한다. 어떤 것은 진동 지속용의 전기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다.

(B)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mechanism for musical boxes)

제9208호의 해설 참조

(C) 악기용 현(musical instrument string)

이 그룹에는 **현악기**(피아노·하프·바이올린·첼로·만도린 등)용의 현을 포함한다. 이것은 보통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 장선(腸線 : catgut)[일반적으로 양의 창자(腸)로 만들어진다]

장선으로 만든 현은 필요한 굵기에 따라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지며; 각 가닥은 세로로 길게 짜른 거트(gut)의 조각이나 완전한 거트로 되어 있다.

- (2) 견·견으로 만든 현은 보통 140가닥의 견섬유로 만들어지며 장선으로 만든 현과 같은 외양을 가지고 있다. 아라비아고무제의 얇은 층으로 도포되고 백색 왁스로 연마되어 있다.
- (3) 인조섬유(보통 나일론)의 모노필라멘트
- (4) 강(鋼: 보통 스테인리스)·알루미늄·은·구리 등의 선. 금속으로 만든 현은 단선의 것이나 금속으로 만든 선에 금속선을 감아서 만든 것이 있다(심선의 둘레를 감은 것). 이 종류의 현은 “메탈와운드(metal-wound)”라 칭한다.
- (5) 금속선[알루미늄이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사용하며 은장하였거나 은으로 만든 것에 상관없다]을 감은 거트·견·나일론 금속선은 심선의 둘레를 감은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현은 견이나 나일론을 감은 거트(gut)로 알려져 있다.

악기의 현은 그 완성이공상태로 식별할 수 있다[강(鋼)제의 현은 연마된 금속으로 제조하며 직경은 엄밀히 검정한다. 거트(gut)로 만든 현은 전적으로 균일하며 직경은 일정하고; 어떤 거트(gut)로 만든 현은 백색 반투명이며 하프용의 현과 같은 것은 때로는 적색·청색 등으로 염색된 것도 있다]. 악기의 현은 그것을 포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식별할 수도 있다(소형의 종이백·봉투·이와 유사한 것에 넣어져 있으며 때로는 용도가 인쇄되어 있다). 그 외에도 어떤 현(특히 금속현)은 악기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루프(loops)나 소형의 금속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악기용의 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속선·거트(gut)·인조섬유로 만든 모노필라멘트(일정한 길이로 절단했는지에 상관없다)는 **포함되지 않는다(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D)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그룹에는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위의 (B)와 (C)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러나 확성기와 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악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과 결합되지 않은 전기기기(모터, 광전지 등)는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피아노·오르간·하모늄·이와 유사한 악기 부분품. 예:

완성된 건반[즉, 프레임에 설치된 건(key)의 완전한 일조]; 피아노기구[즉, 단음장치를 포함하는 해머가 결합된 키 액션(key-action)]; 피아노와 하모늄용의 케이스; 공명판; 나무나 주철로 만든 프레임; 페달기구와 페달; 조울건(wrest pin); 하모늄용의 금속제 혀(tongue)(또는 리드); 건반용의 분리된 건(keys); 해머·댐퍼(damper)·샤프트 shaft)·해머용의 포크 등; 오르간파이프·바람통·풀무(bellow)나 그 밖의 오르간 구성부분품(케이스를 포함한다)

아코디언용의 건(key)·스톱(stop)·풀무(bellow)·건반(keyboard)도 이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아이보리·뼈·플라스틱 재료제의 작은 조각으로서 악기의 건(keys)용으로 피복하여 사용하기 전에 광택을 내거나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그 이상의 가공이 필요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9601호나 제39류**).

(2) 제9202호(현악기)에 해당되는 악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만도린·기타(guitar)·이와 유사한 악기의 동체 ; 기타나 만도린의 “메카니즘(mechanism)” [즉, 현을 적당하게 당길 수 있도록 권축부에 부착된 줄조르개·웜(worm)·치차(tooth wheel)] ; 바이올린·첼로·이와 유사한 악기의 부분품[예: 배·장·목(조상의 것에 상관없다)]·지압판·너트·브리지(bridge)·줄걸이(현을 고정시키는 것)와 버튼·늑골(배부와 복부 사이의)·줄조르개(현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스크롤에 부착된 키의 일종)·현의 조정기 등·첼로와 더블베이스용의 대(지면 위에서 악기를 받치기 위한 것) ; 활과 그 부분품(봉·힐·조정나사 등)[활용의 다발로 된 마모(horse hair)를 포함한다] ; 채(plectra)·약음기(mute)·턱받침

(3) 제9207호에 해당되는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바람통[전자식 피아노·오르간·카리용(carillon)용]·페달기구와 페달·건반·톤 휠(tone wheel)(특히 오르간용의 것)

전자식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하여는 제9207호 해설 참조할 것

(4) 제9205호에 해당되는 목관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목관악기(클라리넷·플루트와 이와 유사한 것)용의 나무로 만든 구성 부분품 ; 악기의 금속으로 만든 동체 ; 슬라이드 ; 익스텐션(extension) ; 여러 가지 형태의 마우스피스(mouthpiece)와 마우스피스 커버 ; 리드(reed) ; 밸브와 밸브 조정 버튼 ; 키(key)·링·접합부 보강용 관·종·약음기(mute) ; 건반침(key pad)(플루트·클라리넷용 등)

(5) 타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봉(부드러운 머리부분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 여러 가지의 맬릿(mallet) ; 드럼 브러시(drum brush) ; 무도악단용으로 사용하는 페달 ; 심벌(cymbal)용 브래킷(bracket) ; 드럼의 동체와 지주 등 ; 실로폰과 이와 유사한 악기용의 석판이나 판금·테이블과 지지용 틀 ; 드럼용이나 이와 유사한 악기용 가죽으로서 원형으로 절단하였거나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악기에 전용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 ; 드럼과 같은 악기의 가죽을 신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현[보통 대마·황마·사이살마(sisal)의 것] ; 사이드 드럼(side-drum)의 스네어헤드(snare-head)를 가로이은 장선이나 금속으로 만든 현(스네어)으로서 인정되는 것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 (1) 악기에 고정시키는 악보대. 악기(예: 사이드드럼이나 색소폰)지지용의 스탠드[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것(제9620호) 이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 (2) 악기연주용의 기계장치 : 건반악기를 카드·디스크·롤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보조장치로서 ; 핸들·페달·풀무(bellow)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구동되기도 하며 악기(보통 피아노나 하모늄)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되어 있다.

(3) **카드·디스크와 롤** : 자동악기용의 것으로서 ; 이러한 물품은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악기와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
*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물품으로서 경첩·핸들·피팅(fittings)(예: 피아노용의 것) 등과 같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b) 조울공구(제8205호)
 - (c) 뮤지컬박스나 기계식 자명조용의 스프링 구동식(태엽식) 모터로서 다른 부분품을 갖추지 않은 것(제8412호)
 - (d) 악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하지 않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 (e) 피아노용 의자(제9401호)와 바닥이나 땅위에 놓도록 만든 악보대(제9403호)와 피아노용 촛대(제9405호)
 - (f) 궁현(bow-string)용의 로진(rosin)(성형된 것으로 한정한다)(제9602호)
 - (g) 플루트·오보에 등에 사용하는 청소용 브러시(제9603호)
-

제 19 부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3 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36류의 물품(예: 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다. 장갑차량(제8710호)
 -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화기에 장착된 것이나 장착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화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제90류)
 - 마. 활·화살·펜싱용 칼·완구(제95류)
 -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2. 제9306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8526호의 무선기나 레이더기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지상용·해상용·공중전용으로 설계된 모든 종류의 무기 : 군사용·경찰용이나 세관·국경 경비대 등 그 밖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
- (2) 개인의 호신용·수렵용·표적사격용으로 사용하는 무기(예: 작은 사격장용의 것·사격연습장용의 것·유원지용의 것 등)
- (3) 폭약에 의하여 작동되는 그 밖의 장치[예: 출발사총과 베리(Very)식 신호용 권총]
- (4) 탄약과 미사일(제36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류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제9305호와 제9306호의 해설 참조) 무기의 부분품과 부속품과 탄약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무기에 사용하는 망원조준기(telescopic sight)와 그 밖의 광학기로서 이러한 것이 무기에 장착되어 있거나 장착할 화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무기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 이러한 광학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

차량류(vehicles)는 무기의 부착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군용으로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장갑철도차량(제86류)·전차와 장갑차량(제8710호)·군용항공기(제8801호나 제8802호)·군함(제8906호)을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차량 등에 부착되는 무기(총·기관총 등)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철도차량이나 도로주행용의 차량에 부착된 특정 종류의 무기에 관해서는 제9301호의 해설 참조).

이 류에는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철모와 그 밖의 군용 모자(제65류)
- (b) 개인용 방호복(예: 흉갑·쇠사슬갑옷·방탄조끼 등)(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c) 석궁·궁술용의 활과 화살 그 밖의 완구의 성격을 갖는 무기(제95류)
- (d)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나 제9706호)

이 류의 물품과 부분품에는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이나 양식 진주·귀석과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의 것)·귀갑(tortoise-shell)·진주 모패(母貝)·아이보리와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93.01 -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 · 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 포병 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 박격포)

9301.2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9301.90 - 기타

이 호에는 **제9302호**의 리볼버(revolver) · 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arms)를 **제외**한 모든 군용 무기(weapon)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군함 · 장갑열차 · 항공기 · 전차 또는 장갑차 무장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도록 설계된 무기(weapon)와 화기(firearm)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포병 무기와 보병지원 무기**. 즉, 모든 형태의 대포와 병기(고정된 것이나 차륜 · 무한궤도 등에 올려져 있는 것)로서 야전포 · 중형 · 대형 · 초대형의 화포(artillery) · 장거리 평사포(guns) · 대공포 · 대전차포 · 곡사포 · 박격포와 같은 것이다.

철도차량에 장착시킨 장거리포도 이 호에 해당한다(제86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동식과 자주식의 포로서 **제8710호**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과 구별되는 것도 이 호로 분류한다.

- (2) 연속으로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어떤 것은 한 사람이 조작하기에 적합하다. 이 그룹에는 기관총 · 기관단총(기관권총) · 그 밖의 연발사격 무기를 포함한다.

- (3) **군용 화기(firearms)[예: 라이플(rifle) · 카빈총(carbine)]**

- (4) **그 밖의 특수 군용 발사장치** : 예를 들면, 군용 로켓 발사장치와 로켓발사기(**제93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폭뢰사출장치 ; 어뢰발사관 ; 화염발사기(점화된 휘발성액을 투사하는 장치). 다만, 잡초구제용의 특수한 화염총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4호)**.

93.02 -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9303호 · 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로서 구경이 어떤지에는 상관없이 장전된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발사체(신호용 조명탄은 **제외한다**)를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휴대하여 손으로 발사하게 설계되어 있다.

리볼버(revolver)는 회전식 실린더가 결합되어 한 개의 총열로 된 화기이다.

피스톨(pistols)은 한 개나 그 이상의 총열을 갖추고 있으며 교환가능한 총열을 갖춘 것도 있다. 반자동 피스톨은 몇 개의 탄을 장탄시킬 수 있는 탄창을 갖춘 것으로서 방아쇠는 탄을 발사할 때마다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호에는 소형(miniature) 피스톨과 소형 리볼버도 포함하며 ; 또한 그 밖의 목적의 모양으로 만든 무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이 사실상 화기라면 연필형 · 포켓 나이프형 · 시가렛(cigarette) 케이스형의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연발사격 무기, 즉, 권총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방아쇠를 당기면 탄창의 탄이 비워지거나 방아쇠로부터 압력이 풀릴 때까지 연속하여 발사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것은 기관단총(기관권총)으로서 ; **제9301호**에 분류한다. 손으로 발사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보통 연장개머리판이 장비되어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 humane) 도살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경기 시작용 · 연극용[총구가 막혀 있는 것이나 중공되어 있지 않은 총열(barrel)이나 끝이 가느다란 실린더를 가진 것]의 공포탄 발사용 피스톨(pistol)이나 리볼버(revolver), 탄약을 발사할 수 없게 설계되거나 발사할 능력이 없는 “흑색화약(black powder)” 총구장전 피스톨(**제9303호**)

(b) 스프링권총 · 공기권총 · 가스권총(**제9304호**)

93.03 -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 - 총구장전 화기

9303.2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9303.3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9303.90 - 기타

이 호에는 **제9301호**와 **제9302호**에 **분류하지 않는** 모든 화기를 포함하며 ; 무기는 아니나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경기용(sporting)·수렵용(hunting)·표적사격용(target shooting)의 총(guns)·라이플(rifle)·카빈총(carbines)**으로서 모든 구경의 것(활강총이나 선조총 식의 것) : 경기용과 수렵용 총은 종종 한 개 이상의 총열(barrel)을 갖춘 것으로서, 때로는 한개의 활강총열과 한개의 선조(rifled)총열을 갖춘 것과 교체가능한 총열(활강총열과 선조총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금속부분과 개머리판(butt)에 장식용의 조각이 된 것도 있다. 표적사격용 총은 보통 한 개의 총열(barrel)만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총에는 1회의 방아쇠 조작으로 1회 사격만을 하며 매 사격 후에 손으로 다시 장탄하는 것이나 탄창이 부착되어 있고 연발사격이 가능한 것이나 반자동 속사용의 기구를 갖춘 것이 있다.

경기용 총으로서 지팡이(walking-stick)와 유사하게 만든 것도 이 그룹에 포함한다.

- (2) **오리사냥총(duck cannon)[펀트(punt)총]** : 이것은 물새(수조)의 수렵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서 보통 보트에 부착시키도록 된 스탠드나 지지대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 (3) **총구장전 [“흑색화약(black powder)”] 화기(firearms)** : 탄약통(cartridge)를 발사하게 설계되어 있지도 발사가 가능하지도 않다.
- (4)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과 그 밖의 신호발사용 권총**
- (5) **모의(dummy, imitation)피스톨이나 안전 피스톨(safety pistol), 안전 리볼버(safety revolver)** : 이러한 것은 공포탄 발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총열은 막혀 있는(solid or blocked barrels) 가스의 출구로 배기구(vent)가 있으면서 총구가 막혀 있는 것이나 중공되어 있지 않은 총열을 갖춘 것이다. 어떤 종류의 리볼버는 실린더 약실의 선단이 좁게 되어 있다. 또한 어떤 경기용의 스타트피스톨이나 연극의 소도구용 피스톨은 총열이 없다. 경주용으로 사용할 때에 이러한 피스톨들은 크로노미터(chronometer) 기기를 작동하기 위한 전기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 (6)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 도살기** : 이러한 것은 공포탄 발사용 피스톨과 유사한 것으로서, 폭발에 의하여 볼트(bolt)가 총열내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방으로 튀어나가 동물을 도살하거나 실신시키는 것이다. 볼트(bolt)는 피스톨을 떠나지 않으며, 재사용을 위하여 후퇴된다.

이 호에는 탄환발사용 권총(보통 구경이 큰 것)으로서 때에 따라서 동물의 도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제9302호)**.

- (7)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 주로 구난이나 통신의 수발(establishing)용으로 선박이나 구명보트 정거장에 사용한다.
- (8) **포경포(harpoon gun)** : 바다의 물고기 · 포유동물 · 바다거북 등의 포획을 위하여 작살에 끈을 달아 사용하는 것이다.
- (9) **경고용 총 · 박격포 · 이와 유사한 화기** : 이러한 것은 경보용(예: 구명보트 정거장용) · 의식용 · 침입자 경고용 등으로 사용하는 공포용의 것이다.
- (10) **“촉우포(hail cannon)”** : 이것은 절두형의 원추상의 철판으로 된 일종의 포로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우운(雨雲 : hail cloud)을 향하여 발사하는 것이다.

리베팅 공구(riveting tool) · 벽공의 충전용 등에 사용하는 공구로서, 화약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205호).

93.04 -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 가스총 · 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9301호부터 제9303호까지**의 화기(firearms)와 **제9307호**의 무기(arms)를 **제외**한 무기(arms)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경찰봉(truncheon) · 호신봉(life-preserver) · 가중된 봉(weighted cane)과 이와 유사한 경찰용 봉 등 · 낚을 박은 지팡이**
- (2) **너클더스터(knuckleduster)** : 즉, 꼭 쥐 주먹에 맞는 모양의 금속조각으로써 이것을 차고 타격을 가한다.
- (3) **투석기(catapult)** : 조류나 해충류 등에 발사하도록 된 것으로서 지팡이의 형으로 되어 있다. 완구용 투석기는 **제외한다(제9503호)**.
- (4) **공기총 · 공기라이플 · 공기권총** : 이러한 것은 보통의 라이플 · 피스톨 등과 비슷하게 되어 있으나 압축공기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방아쇠를 당기면 충신으로 압축공기가 보내져서 탄을 발사한다.
총 · 라이플 · 피스톨은 동일한 원리로 조작되며 공기 이외의 가스식의 것도 포함한다.
- (5) **강력한 스프링 메커니즘의 반발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유사한 무기**
- (6) **가스총(gun)과 피스톨(pistol)** : 압축 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하여 조작되는 것으로 자유방목동물에 마취약이나 약물(항혈청 · 백신 등)이 함유된 자동주사기를 원격발사하는데 사용하는 것
- (7) **최루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에어로졸 스프레이캔(aerosol spray can)**

93.05 -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 9305.1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 9305.20 -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930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 9305.91 -- 제9301호의 군용 무기의 것
- 9305.99 -- 기타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군용 무기(military weapon)의 부분품** : 예를 들면, 모든 종류의 총에 사용하는 라이너(총열용의 관)·반동기구와 포미; 대포·기관총·기관단총용의 포탑·포가·삼각대와 그 밖의 특별한 지지구(표적과 장탄 메커니즘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군용의 소형무기, 스포츠용과 표적사격용 총·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용의 금속제의 주물제품, 압형제품, 단조제품** : 예를 들면, 총열·총미(breech)·격발장치·방아쇠울·텀블러(tumbler)·레버·격철·코킹피스·방아쇠·시어(sears)·갈퀴·방출기·프레임[피스톨(pistol)의 것]·개머리관·개머리받침대판·안전장치·실린더[리볼버(revolver)의 것]·총신의 전후에 부착된 조준기·탄알집(magazines)
- (3) 개머리관·조준기·총열·브리치(breech)의 **보호용 커버와 케이스**
- (4) **모리스튜브(morris tubes) 등**(중구경 총구에 삽입된 소구경의 튜브와 소사격장에서 연습용 라이플)
- (5) 총·라이플(rifle)·카빈총(carbine)용의 **총상과 그 밖의 목재부분**과 피스톨(pistol)과 리볼버(revolver)용의 **개머리관**
- (6) 총·라이플·카빈총용의 **멜빵·밴드(band)·차총이나 총열 개머리관의 회전고리 회전 밴드**
- (7) **소음기(silencers)**(음향조절기)
- (8) 스포츠용이나 표적사격용 총의 **반동 흡수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15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용성의 부분품[예: 스크루(screw)·리벳(rivet)·스프링]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제39류)
- (b) 총의 케이스(제4202호)
- (c) 항공기용의 건카메라(gun camera)(제9007호)
- (d)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와 이와 유사한 조준기(제9013호)
- (e)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는 부속품(예: 총신소제용 줄·총신소제용 봉·그 밖의 무기소제용 도구)(제8205호·제9603호 등)

93.06 -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 그 밖의 총포탄 ·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 탄약

9306.29 -- 기타

9306.30 -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9306.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총포탄(ammunition)** : 예를 들면

- (1) 포탄(폭약 · 유산탄 · 천공탄 · 조명탄 · 섬광탄 · 예광탄 · 소이탄 · 발연탄 등)과 총과 박격포용의 모든 다른 형태의 총포탄
- (2) 모든 종류의 탄약 : 공포(blank)(리벳 공구용이나 압축점화식피스톤 내연기관 시동용의 공포를 포함한다) · 실포 · 예광탄 · 소이탄 · 유산탄 · 스포츠용의 산탄과 장탄 등
- (3) 산탄(slug) · 탄환(pellet)[중공(hollow)의 것 · 구상(spherical)의 것 · 허리가 잘록한(waisted) 것 등], 공기 · 가스 · 스프링의 총, 카빈총이나 권총용의 침두탄(제9503호의 완구용의 것은 제외한다)

(B)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 탄두는 원지점에 도달한 후 지구표면에 돌아오며 탄도미사일은 탄두에 초속 7,000m 이하의 최종속도(terminal velocity)를 부여한다.

(C) **발사 후 자기추진되는 형의 폭탄** : 예를 들면, 어뢰 · 비행탄(항공기와 비슷한 미사일) · 유도탄 · 로켓형 폭탄

(D) **그 밖의 군용 폭탄** : 예를 들면, 지뢰와 기뢰 · 폭뢰 · 수류탄 · 총류탄 · 항공기 탑재용의 폭탄

(E) **포경포용의 작살(harpoon)** : 포경포용총으로 사용하며 폭약두의 유무에 상관없다.

(F) **폭탄과 군용탄의 부분품** : 예를 들면,

- (1) 유탄 · 지뢰 · 폭탄 · 포탄 · 어뢰의 동체
- (2) 탄피와 그 밖의 탄약의 부분품. 예: 황동제의 베이스(base), 금속이나 판지로 만든 내부덮개 · 내부베이스와 라이닝(lining), 펠트 · 종이 · 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드(wad)
- (3) 탄과 납탄 : 총포탄용으로 조제된 것
- (4) 포탄 · 어뢰용 등의 신관(침단과 저부의 기폭용의 것), 시한신관, 격발신관, 근접신관(전자적 작용에 의한 것) ; 신관의 부분품(보호용 캡을 포함한다)
- (5) 폭탄의 기계적인 부분품. 예: 어뢰용의 특수 추진기와 특수 자이로스코프(gyroscope)

- (6) 어뢰용의 탄두(war-head)와 부력실(buoyancy) 등
- (7) 유탄의 격침·안전핀·레버·그 밖의 부분품
- (8) 폭탄용의 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화약과 폭약(총포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제3601호**와 **제3602호**) ;
도화선·도폭선·화관·점화기·뇌관(파열탄용의 뇌관을 포함한다)(**제3603호**)
- (b) 신호용 조명탄과 레인로켓(rain rocket)(**제3604호**)
- (c) 장전된 소화탄과 소화기용의 장전물(**제3813호**)
- (d) 로켓·어뢰·이와 유사한 유도탄용의 **제8411호**나 **제8412호**에 열거된 모터
- (e) **제8526호**의 무선기거나 레이더기기(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 (f) 폭약이나 이들의 부분품에 사용하는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부분품(예: 신호용의 것)(**제9108호**
부터 제9110호까지와 **제9114호**)

93.07 -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이 호에는 검(swords)[속에 칼이 든 지팡이(swords-sticks)를 포함한다] · 단검(cutlass) · 총검(bayonets) · 창 · 기병용의 창 · 단창 · 도끼창 · 쿠크리칼(kukris commando knife) · 단도(dirk) · 단검(stiletto) · 단도(dagger) 등의 무기가 분류한다. 이러한 날(blade)은 보통 고품질의 강(鋼)으로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의 방패구나 핸드가드(handguard)가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의식용 · 장식용 · 연극용의 것이라 할지라도 무기로서 분류한다.

무기는 대부분 날이 고착되어 있으나 어떤 종류의 단검과 단도에는 보통 날이 손잡이 속에 넣어지도록 만든 가동식의 것이 있다. 이 날은 손이나 스프링 기구로 펴지기도 하고 넣어지기도 한다.

이 호에는 휴대용 무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검의 날[날의 블랭크(blank)의 것. 즉, 단조만이 된 것도 포함한다] · 검 · 총검 · 단검(dagger) 등의 손잡이 · 날밑 · 자루 · 집(鞘 : sheath)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검 · 총검 등을 지지하는 가죽으로 만든 벨트와 이와 유사한 군장용의 것(**제4203호**), 방직용 섬유 재료의 것(**제6217호**) ; 검의 끈(일반적으로 **제4205호**나 **제6307호**)
- (b) 수렵용 · 캠핑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칼(칼붙이인 것)(**제8211호**), 이러한 칼의 집(鞘 : sheath)(일반적으로 **제4202호**)
- (c) 귀금속으로 만들었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집(鞘 : sheath)(**제7115호**)
- (d) 펜싱용 검(fencing foil)(**제9506호**)

제 20 부

잡품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39류·제40류·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 나.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울[예: 전신거울(cheval-glass)](제7009호)
- 다. 제71류의 물품
-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 마. 제8418호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와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452호)
- 바. 제85류의 램프·광원과 이들의 부분품
- 사.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18호), 제8519호·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2호)나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9호)
- 아. 제8714호의 물품
- 자.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나 치과용 타구(제9018호)
- 차.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조명용 스트링(lightning string)은 제외한다](제9505호)
- 타.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2.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
- 나. 의자와 침대

3. 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로 만들거나(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제69류의 대리석·그 밖의 돌이나 각종 재료로 만든 시트(sheet)나 슬래브(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 없으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지 않는다.

- 나. 제9404호의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조립식 건축물은 강(鋼)으로 만든 “모듈화된 빌딩 유닛”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보통 표준 선적 컨테이너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시되지만 내부가 대체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사전조립되어 있다. 이러한 모듈화된 빌딩 유닛은 보통 영구적인 건물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된다.

총설

이 류에는 류주에서 열거한 제외규정은 **그에 따르고**,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모든 가구와 이들의 부분품(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
- (2)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어떤 재료든지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제9404호)
- (3) 모든 재료로 만든(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재료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의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이와 유사한 것(영구적으로 고정된 전원장치를 갖추고 있다)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이들의 부분품(제9405호)
- (4)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이 류에 있어서 “가구(furniture)”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이동주택형 트레일러(caravan trailer)·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하는 의자와 같이 마루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원·광장·산책길 등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자(seat, chair 등)]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 (B) 다음에서 규정한 물품

- (i)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유닛식의 가구로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제품(책·도기·유리제품·린넨·약제·화장용 물품·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장식품 등)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것, 다른 물품 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한 것과 별도로 제시하는 단일가구의 물품

- (ii)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설계한 의자나 침대

위의 (B)에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구(furniture)”라는 용어에는 가구로 사용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 위에 놓기 위해서나 벽에 걸기 위해서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류에서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이와 유사한 물품걸이·열쇠걸이·옷솔걸이·신문걸이 등과 같은 그 밖의 벽부착구와 라디에이터(radiator) 스크린과 같은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 류에서는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예: 분류함·서류함)(제3926호나 제8304호)은 **제외한다**.

다만, 붙박이나 붙박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비품[식기선반·라디에이터(radiator) 스크린 등]으로서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 건물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는 **모든 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非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새김·상감세공(inlaid)·장식적인 도장·거울이나 그 밖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카스터(caste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 가구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미소한 부품(예: 문자·띠무늬·테 등)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제71류**)

분해(disassembled)하거나 미조립(unassembled)하여 제시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품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assembled)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가구류가 유리·대리석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판·부착물이나 그 밖의 부품품을 갖춘 것(예: 유리덮개를 갖춘 목제테이블·거울이 달린 목제 옷장·윗 표면이 대리석으로 된 찬장)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부분품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의 부분품으로서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각 해설의 하단에 열거한 제외규정 이외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4409호**의 비딩(beading)과 몰딩(moulding)
- (b)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의 홈을 판 스트립(strip)으로서 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물질로 피복하였고 절단한 뒤 자른 금을 따 “V”자형으로 접어 가구의 부분(예: 서랍의 칸막이)을 형성하도록 의도된 것 (**제4410호**)
- (c) 유리(거울을 포함한다)·대리석이나 그 밖의 석(石)제의 판·**제68류**나 **제69류**에서 열거한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판(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판이 다른 부분품과 결합하여 가구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예: 옷장용의 거울제품).
- (d)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자물쇠·그 밖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e) 완구용의 가구와 램프나 조명기구(**제9503호**)
- (f) 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94.01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 항공기용 의자

9401.20 - 차량용 의자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401.31 -- 목재로 만든 것

9401.39 -- 기타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9401.41 -- 목재로 만든 것

9401.49 -- 기타

-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2 -- 대나무로 만든 것

9401.53 -- 등나무로 만든 것

9401.59 -- 기타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9401.69 -- 기타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71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9401.79 -- 기타

9401.80 - 그 밖의 의자

- 부분품

9401.91 -- 목재로 만든 것

9401.99 -- 기타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예: 라운지 체어·팔걸이 의자·접의자·데크 체어(deck chair)·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든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노인용의자·벤치·긴의자(couch)(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긴 의자(settee)·소파·깔개의자(ottoman)·이와 유사한 것·결상(등이 없는)[예: 피아노용 결상·제도사용 결상·타이피스트(typist)용 결상·두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결상 스텝]·음향장치를 내장한 의자(DVD·음악 CD·MP3·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비디오게임 콘솔·비디오게임기·텔레비전·위성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이 호의 좌석은 보조적인 것으로서 좌석과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예: 조명 기능뿐만 아니라, 장난감 구성부품, 진동기능, 음악이나 음성 플레이어)를 내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팔걸이 의자·침상·긴 의자(settee) 등은 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디딤대(보통 제4421호와 제7326호)

- (b) 시트 스틱(seat-stick)(제6602호)
- (c) 제8714호의 물품(예: 안장)
- (d) 반사시험용의 속도조절가능 회전의자(제9019호)
- (e) 제9402호의 의자(chair와 seat)
- (f)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스툴(stool)과 발판의자(foot-stool)(흔들여주는 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유아(乳兒)용 보행기(baby walker)와 의자로서의 보조적인 용도를 갖는 리넨(linen) 체스트와 이와 유사한 체스트(chest)(제9403호)

부분품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의자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시트커버나 등받이 커버와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 만든 쿠션과 매트리스(mattress)가 별도로 제시될 경우 이들이 비록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예: 긴의자·침대의자·소파)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히 명기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404호)**. 그러나 이들 물품들이 의자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할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또한 이들 물품이 의자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의자와 함께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9401.31호

목재로 된 높이 조절 가능 회전의자(swivel seats)는 회전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기울여질 수도 있는 시트(seats)를 가진 의자이다. 등받이가 있는 회전의자의 경우에는 그 등받이는 시트와 별도로 기울여질 수도 있다. 시트의 대부분뿐만 아니라 등받이(해당되는 경우도 또한 목재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시트는 액압/가스 실린더나 나사로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어진다. 바뀌는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소호 제9401.61호와 소호 제9401.71호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upholstered seat)”는 예를 들면, 솜뭉치·삼부스러기·동물의 털·셀룰로오스의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의자에 성형시키고(고정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직물·가죽·플라스틱 쉬팅과 같은 재료로 덮어씌운 것으로 만든 부드러운 층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속을 대는 재료를 덮어씌우지 않았거나 그것을 덮어씌우기 위한 하얀 직물로 만든 커버만을 갖춘 의자[“무슬린 상태의(in muslin)” 속을 댄 의자라고 한다]·앉는 부분이나 등을 대는 쿠션을 따로 떼어낼 수 있고, 이러한 쿠션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시하는 의자와 속을 대기 위한 나선형의 스프링을 갖춘 의자도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로 분류한다. 한편, 수평으로 되게 움직여주는 인장스프링이 있고, 강선(steel wire)으로 만든 격자와 팽팽한 직물 등으로 프레임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된 것은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으로 분류하는 의자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속을 대는 재료나 스프링과 같은 삽입물이 없이 식물·가죽·플라스틱 쉬팅과 같은 재료로 직접 덮어씌운 의자와 한겹의 직물에 셀룰러 플라스틱의 얇은 층을 넣어 보강한 의자도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호 제9401.80호

이 소호에는 또한 차량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캐리지(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safety seats)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 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

94.02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9402.90 - 기타

(A)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

이 그룹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일반이나 특정 외과용 수술대 : 수술대를 조절·경사·회전·올려줌으로써 환자를 수술에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것
- (2) 복잡한 수술용의 특수한 정형외과용 수술대(예: 궁둥이·어깨·척추 등)
- (3) 동물용의 생체해부대와 이와 유사한 테이블 : 이들은 흔히 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 (4) 임상실험·의학적인 치료·마사지 등에 사용하는 테이블·테이블 침대·이와 유사한 물품 ; 산부인과·비뇨기과 등에서 사용하거나, 진료나 수술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비인후과나 안과 치료에 사용하는 침대와 의자

다만, 이 호에는 X선용 등의 특수화된 테이블과 의자는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022호**).

- (5) 일반 의사와 외과의사용 특수 의자
- (6) 분만용 침대(confinement bed : 때때로 birthing bed라 한다) : 보통 윗부분의 아래로 미끄러져 아래부분의 통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
- (7) 다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일으키거나 이들 환자들을 움직이지 않고 위생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침대
- (8)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를 경첩식으로 부착시킨 침대로서 결핵환자나 그 밖의 환자의 치료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것
- (9) 부목장치나 탈골이나 골절치료장치와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침대

다만, 이들 장치가 침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침대에 부착하도록 설계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하며 기계장치를 갖추지 않은 침대는 **제9403호**에 분류한다.

- (10) 병원·진료소 등의 구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것(stretcher)과 트롤리 들것(trolley stretcher)

다만, 거리에서 장애우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은 **제외한다(제87류)**.

- (11) 의료기기나 붕대·내과용이나 외과용품이나 마취용 장비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형의 소형테이블·테이블식 찬장·이와 유사한 물품[바퀴(trolley)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 의료기기 살균용의 손수레 ; 특수한 소독용 세면대·자동개방식의 무균약품상자(보통 바퀴가 달려 있다)와 사용하여 더러워진 약품을 담은 통(바퀴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 병 받침대·세척기(irrigator)나 주수기 운반용구와 이와 유사한 것[피보팅용 카스터(caster)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 특수 기기나 드레싱용의 캐비닛과 케이스
- (12) 치과용 의자(마취용 의자식 침대를 포함한다) : 경사되는 것과 때때로 중심축 상에서 회전시킬뿐만 아니라 상하로 조절하는 기구(보통 신축식의 것)를 갖추고 있으며, 제9018호의 치과용 기구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조명기구 등의 장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치과용의 입을 행구는 타구(spittoon)(베이스나 스탠드 위에 설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제9018호의 치과기구를 갖춘 치과용 의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8호)**.

이 그룹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형의 가구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 범용성의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 그룹에는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를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서는 피아노 스톨(piano stool)·기계식 흔들의자·회전의자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제9401호**).

(C) 부분품

앞에서 언급한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이들을 제9402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 (1)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수술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종류의 물품(예: 어깨·다리나 대퇴부의 고정용구·다리 지지구·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받침·팔이나 가슴의 지지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2) 치과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예: 머리받침·등받침·발을 올려놓는 대·팔걸이·팔꿈치 받침 등)

94.03 -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 9403.1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 9403.20 -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 9403.30 - 사무실용 목제가구
- 9403.40 - 주방용 목제가구
- 9403.50 - 침실용 목제가구
- 9403.60 - 그 밖의 목제가구
- 9403.7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 9403.82 -- 대나무로 만든 것
- 9403.83 -- 등나무로 만든 것
- 9403.89 -- 기타
 - 부분품
- 9403.91 -- 목재로 만든 것
- 9403.99 -- 기타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critoire)·서가·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 (1) **개인주택용·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리넨체스트·브레드체스트·로그체스트; 장롱·톨보이(tallboy); (조상 등의)주춧대·화분용 스탠드; 화장대; 외다리 테이블; 양복장·린넨 양복장; 홀용 스탠드·우산용 스탠드; 사이드보드·찬장(dresser)·식기선반(cupboard); 안전찬장; 침대옆 테이블; 침대(양복장 겸용 침대·캠핑용 침대·접는식의 침대·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 재봉대; 발이 쉴 수 있도록 설계된 스톨과 발판의자(흔들거리는 것인 지에는 상관없다)·난로용 화열방지 칸막이; 통풍 스크린; 세워놓는 재떨이; 뮤직 캐비닛·악보대나 악보용 데스크; 유아용 놀이터(play-pen);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 지에는 상관없다)
- (2) **사무실용 가구.** 예: 옷 넣는 로커(locker)·파일링 캐비닛(filing cabinet)·파일링 트롤리(filing trolley)·카드식 색인파일 등
- (3) **학교용 가구.** 예: 학생용 책상·강의용 탁자(교탁)·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
- (4) **교회용 가구.** 예: 제단·고해용 박스·설교단·성체 벤치·성서낭독대 등
- (5) **상점·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 예: 계산대; 옷걸이; 선반설비 세트; 칸막이로 되거나 서랍 달린 작은 장; 공구 등을 넣어두는 작은 장; 인쇄작업용의 특수 가구(케이스나 서랍이 달린 것이다)
- (6) **실험실용·연구실용 가구.** 예: 현미경 테이블; 실험대(유리케이스·가스노즐·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 지에 상관없다); 유독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실험 용기(fume-cupboard); 장비를 갖추지 않은 제도용 테이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여행용 체스트·트렁크·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구의 특성을 갖지 않은 것(제4202호)
- (b) 가구의 특성을 갖지 않은 사다리·계단·가대(架臺: trestle)·목공용(木工用) 작업대·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 물품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4421호·제7326호 등).

- (c) 벽에 짜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식기 선반용 등의 구성부분(예: 프레임·문짝·선반)(나무로 만든 것은 **제4418호**)
- (d) 휴지통[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 ; 바구니세공이나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은 **제4602호**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7326호·제7419호** 등]
- (e) 해먹(일반적으로 **제5608호**나 **제6306호**)
- (f) 지면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거울. 예: 양화점·양복점 등에서 사용하는 큰 체경(cheval-glass)·회전경(**제7009호**)
- (g) 장갑하거나 보강한 금고(**제8303호**). 다만, 화재·충격·파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용기(container)로서 특히 그 벽을 뚫거나 절단하여 부서서 열려고 할 경우 이에 잘 견디지 못하는(do not offer any serious resistance) 것은 제9403호에 분류한다.
- (h) 냉장고·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즉, 가구의 특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냉동유닛이나 냉동유닛의 증발기를 갖추었거나 이들을 갖추도록 설계한 캐비닛 등)(**제8418호**)[이 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다만**, 아이스박스·아이스체스트·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연 캐비닛으로 실제 냉동기구를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도록 설계 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히 유리섬유·코르크·양털 등으로 절연시킨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 (ij) 재봉기용의 대로 사용하거나 재봉기를 부착시키도록 특별히 설계한 가구(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구로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보호용 커버·서랍·연장물·그 밖의 이러한 가구의 구성부분품(**제8452호**)
- (k)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18호**)·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2호**)나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9호**)
- (l) 축소확대기(pantograph)와 같은 기구를 부착한 제도용 테이블(**제9017호**)
- (m) 치과용 타구(**제9018호**)
- (n)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제9404호**)
- (o) 스탠다드 램프와 그 밖의 조명기구(**제9405호**)
- (p) **제9504호**의 당구대나 게임용으로 특별히 만든 그 밖의 가구와 **제9505호**의 기술용(奇術用) 테이블

94.04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 · 이불 · 우모이불 · 쿠션 · 푸프(pouff) ·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 매트리스

9404.21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2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404.30 - 침낭(sleeping bag)

9404.40 - 이불 · 침대보 · 솜털이불 · 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

9404.90 - 기타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 즉, 침대의 탄성을 갖는 부분으로서 보통 스프링이나 강선(鋼線 : steel wire)으로 만든 망(mesh)을 부착한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틀로 구성하거나[스프링이나 와이어서포트(wire support)], 내장된 스프링과 충전물을 직물로 씌운 목재로 만든 틀(매트리스 베이스)로 구성한다.

다만, 이 호에서는 체어나 그 밖의 의자용으로 함께 조립한 나선형의 스프링(제9401호)과 직조한 강선제의 망으로 장착하지 않은 것(제7314호)을 제외한다.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 · 양털 · 말털 · 우모 · 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 · 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예를 들면,

(1) 매트리스(금속으로 만든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우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 · 솜털이불(eiderdown)과 깃털이불(duvet)[컴포터(comforter)](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 · 덧베개 · 베개 · 쿠션 · 푸프(pouff) 등

(3) 침낭(sleeping bag)

이들 물품이 전열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물을 넣어 사용하는 매트리스(일반적으로 제3926호나 제4016호)

(b)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매트리스나 베개(제3926호 · 제4016호 · 제6306호)나 쿠션(제3926호 · 제4014호 · 제4016호 · 제6306호 · 제6307호)

(c) 두꺼운 방석용의 가죽으로 된 커버(제4205호)

(d) 담요(제6301호)

(e) 베갯잇 · 아이다솜털이나 깃털 이불용의 커버(제6302호)

(f) 쿠션용의 커버(제6304호)

의자 부분품의 특성을 갖는 쿠션(cushion)이나 매트리스(mattress)에 관하여는 제9401호 해설을 참조할 것

94.05 -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1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9405.19 -- 기타

-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조명기구

9405.2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9405.29 -- 기타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스트링

9405.3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9405.39 -- 기타

-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9405.41 --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5.42 --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5.49 -- 기타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9405.69 -- 기타

- 부분품

9405.91 -- 유리로 만든 것

9405.92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405.99 -- 기타

(I)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 · 기름 · 석유 · 파라핀(또는 kerosene) · 가스 · 아세틸렌 ·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 · 스위치 · 플렉스와 플러그 · 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 램프; 천장 램프; 샹들리에(chandelier); 벽 램프; 스탠다드(standard)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 램프; 나이트 램프; 방수 램프]

- (2) **옥외조명용 조명기구(luminaires for exterior lighting)**[예: 가로등 ; 현관 램프 · 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 · 기념건물용 · 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
-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 촬영소용 램프 ;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 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카니발용 · 오락용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 (4) **제86류의 차량용 · 항공기용 · 선박용 · 보트용의 조명기구**[예: 열차용 헤드램프 ; 기관차용 랜턴 · 철도차량용 랜턴 ; 비행기용 헤드램프 ; 선박용 랜턴 · 보트용 랜턴. 다만, 실드빔(sealed beam) 램프 유닛은 제8539호에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5) **휴대용 램프(portable lamps)(제8513호의 것을 제외한다)**[예: 내풍용(耐風用) 램프 ; 마구간용 램프 ; 핸드랜턴 ; 광부용 램프 ; 채석공용 램프]
- (6) **나뭇가지 모양의 큰 촛대 · 촛대 · 양초 받침대(예: 피아노용의 것)**

이 그룹에는 또한 **서치라이트(searchlight)**와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집중된 광선(보통은 조절할 수 있다)을 반사경과 렌즈에 의하거나 단지 반사경만을 갖추어 일정한 거리를 지나서 지점이나 표면에 비쳐진다. 이 반사경은 대개 은을 입힌 유리로 만들어져 있거나, 연마한 것이나 은이나 크로뮴을 입힌 금속으로 되어 있다. 렌즈는 대개 한 면이 볼록하거나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다[프레스넬 렌즈(Fresnel lens)].

서치라이트(searchlight)는 예를 들면, 대공작전용으로 사용하고, 스포트라이트(spotlight)는 무대세트용과 사진이나 영화 촬영용으로 사용한다.

(II)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으로서 모든 재료로 만든 광고용 램프 · 광고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도로용 사인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광고용판과 주소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
* *

부분품

이 호에는 또한 조명기구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예:

- (1) 조명용 펜던트(lighting pendant)에 사용하는 서스펜션(suspension) 조립품[고정(rigid)식이나 체인(chain)식의 것]
- (2) 구(globe)의 홀더
- (3) 핸드램프(hand lamp)용의 베이스 · 손잡이 · 케이스
- (4) 램프용의 버너 ; 맨틀 홀더(mantle holder)
- (5) 랜턴 프레임

- (6) 반사경
- (7) 램프용의 유리나 잣[병목(bottle-neck)형의 것 등]
- (8) 광부용 안전램프에 사용하는 두꺼운 유리로 된 작은 실린더
- (9) 확산기(diffusers)(설화석고제의 산광기를 포함한다)
- (10) 접시·컵·잣[램프갓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골격선 프레임(skeleton wire frame)을 포함한다]·구(glob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11) 샹들리에(chandelier)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불(balls)·서양배모양(pear-shaped)의 늘어뜨리는 장식·꽃모양의 조각·팬던트·작은 환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의 크기와 고정장치로 확인이 가능한 것

이 호 물품의 비전기식 부분품으로서 전기식 부분품과 결합된 것도 이 호로 분류한다. 별도로 제시하는 전기기구[예: 스위치·램프홀더·플렉스(flex)·플러그·변압기·스타터(starter)·안정기]는 **제외한다(제85류)**.

이 호에서는 다음 것도 **제외한다**.

- (a) 양초(**제3406호**)
- (b) 수지 토치(resin torch)(**제3606호**)
- (c) 조명용이 아니거나 광원이 고정되지 않은 조명용의 것으로서 사인·네임 플레이트 이와 유사한 물품(**제3926호·제70류·제8310호** 등)
- (d) **제4905호**의 내부 조명기구를 갖춘 인쇄된 구(球)
- (e) 직물·편직물·편물재료로 만든 램프용의 십지(**제5908호**)
- (f) 실에 꿰 유리구슬이나 장식구슬 등으로 만든 유리로 만든 비드(bead)와 장식물(예: 술)로서 램프갓을 장식용에 사용하는 것(**제7018호**)
- (g) 자전거와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기와 신호기기(**제8512호**)
- (h) 전기식 필라멘트 램프·방전램프[실드 빔 램프 유닛, 자외선 램프나 적외선 램프,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예: 소용돌이 무늬·문자·숫자·별 등)의 관(管)을 포함한다], 아크 램프와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제8539호**)
- (ij) 사진용 섬광기구(전기식으로 점화되는 섬광기구를 포함한다)(**제9006호**)
- (k) 광학식 라이트 빔 신호기기(**제9013호**)
- (l) 의료용의 진단·검진·조사 등에 사용하는 램프(**제9018호**)
- (m) 종이초롱등(Chinese lantern)과 같은 장식용품(**제9505호**)

94.06 - 조립식 건축물(+)

9406.10 - 나무로 만든 것

9406.20 - 모듈화된 빌딩 유닛[강(鋼)으로 만든 것을 한정한다]

9406.90 - 기타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축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 완전한 건축물(조립되지 않은 것)
- 불완전한 건축물(조립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조립식 건축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

미조립 상태로 제시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를 부분적으로 조립하였거나(예: 벽·지붕틀) 길이에 맞추어 잘랐거나[특히 빔·조이스트(joist)]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절단하도록 임의로나 일정하지 않은 길이로(토대·절연재 등)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불박이 설비에 한정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전기식 부착물(배선·소켓·스위치·차단기·벨 등)과 가열용이나 공기조절용의 장치(보일러·방열기·에어컨 등)·위생용 기기(목욕통·샤워기·온수기 등)·부엌용 기기[싱크·후드(hood)·조리기 등]·불박이식이나 불박이식으로 설계한 가구(예: 벽장)를 포함한다.

조립식 건축물은 강(鋼)으로 된 “모듈화된 빌딩 유닛”[모듈(module)이라고도 부른다]을 포함한다. 이들은 보통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용으로 의도된 표준 선적 컨테이너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들은 건물 모듈 유형에 따라 적절하도록 내벽·바다·천장·문·창문·전기시설·배관시설이 대체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내부에 사전조립 되어있다. 이들은 계단·불박이 가구·부엌장비·위생 설비·외부 피복(external cladding)과 지붕재료와 같은 다른 부착물이나 장착구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독립적(self-supporting)이며,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다른 모듈과 함께 조립하여 병원·호텔·주거·공동 시설·학교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들은 모듈을 연결하는 조립 부품들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듈화된 빌딩 유닛에는 영구 새시가 달린 유닛[“이동 주택(mobile home)”]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이나 완성 작업용의 재료[예: 못·글루·플라스터(plaster)·모르타르(mortar)·전선과 케이블·튜브와 파이프·페인트·벽지·양탄자]가 건물과 함께 적당한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건물과 같이 분류한다.

별도로 제시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9406호에서 **제외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9406.10호

이 소호의 분류의 목적상, “나무로 만든 것(of wood)”이라는 표현은 나무로 된 구조물, 외벽, 마루(만약 마루가 있다면), 주로 나무로 구성된 그 밖의 특징적인 건축 요소들을 갖춘 조립식 건축물을 말한다.

소호 제9406.20호

이 소호에는 “플랫 팩(flat pack)”이나 구조적으로 독립적(self-supporting)이지 않은 조립 유닛으로 제시된 조립된 건축물(소호 제9406.90호)과 강(鋼)으로 된 선적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건설된 것이지만 다른 모듈과 조립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완전한 독립식인(self-contained) 건물(예 : 거리 키오스크 또는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양초(제3406호)
- 나. 제3604호의 불꽃이나 그 밖의 화공품
- 다. 제39류·제4206호·제11부의 낚시용 실·모노필라멘트·끈(cord)·거트(gut)나 이와 유사한 물품(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으나 낚싯줄로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라. 제4202호·제4303호·제4304호의 운동용 백이나 그 밖의 용기
- 마. 제61류나 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가장복(fancy dress), 제61류나 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운동용 의류 및 특수복(팔꿈치·무릎 또는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 또는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펜싱복 또는 축구 골키퍼의 저지)
- 바. 제63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깃발류나 보트용·세일보드용·랜드크라프트(land craft)용 돛
- 사. 제64류의 운동용 신발류(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는 제외한다)나 제65류의 운동용 헤드기어
- 아. 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 자. 제7018호의 인형이나 그 밖의 완구용인 유리로 만든 안구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 차.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카. 제8306호의 벨·징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 타. 액체펌프(제8413호),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청정기(제8421호), 전동기(제8501호), 변압기(제8504호),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매체(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8523호), 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무선 적외선 원격제어장치(제8543호)
- 파. 제17부의 경기용 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제8712호)
- 거. 무인기(제8806호)
- 너. 카누·스키프(skiff)와 같은 운동용 크라프트(craft)(제89류)나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은 제44류)
- 더. 운동용이나 옥외게임용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4호)
- 러. 데코이 콜(decoy call)이나 휘슬(제9208호)
- 머. 제93류의 무기나 그 밖의 물품
- 버. 각종 조명용 스트링(제9405호)
- 서.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 어. 라켓용 줄, 텐트와 그 밖의 캠핑용품, 장갑·병어리장갑(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저. 식탁용품·주방용품·화장용품·카펫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의류·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과 실용상의 기능을 가진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4.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5. 제9503호는 그 디자인·외형·구성 재료로 볼 때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예: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한다(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6. 제9508호에서
 - 가. "놀이공원의 탈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수류(水流)를 포함한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탈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탈 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나. "워터파크 놀이기구(water park amusements)"란 특별한 목적 없이 건설된 수로를 따라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 장치나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워터파크 놀이기구는 워터파크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설비만을 포함한다.
 - 다. "유원지용 오락물(fairground amusements)"이란 운, 힘이나 기술을 겨루는 게임으로 보통 기사나 안내원이 있으며 영구적인 건물이나 독립된 구내상점 안에 설치된다. 유원지용 오락물에는 제9504호의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호주: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텔레비전 수상기·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이 소호에서는 코인·은행권·은행 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다른 지급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디오게임 콘솔이나 비디오게임기는 제외한다(소호 제9504.30호).

총설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한다.

이 류의 각 호에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 류의 물품 중에는 일반적으로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러한 재료를 경미한 부분(minor constituents)에만 사용한 것을 이 류에 분류한다.

다음의 해설에 따라 제외하는 물품과는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3604호의 불꽃이나 그 밖의 화공품(火工品)
- (b) 제4011호·제4012호·제4013호의 고무타이어와 그 밖의 물품
- (c) 텐트와 캠핑용품(일반적으로 제6306호)
- (d) 액체펌프(제8413호),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나 청정기(제8421호), 진동기(제8501호), 변압기(제8504호), 디스크·테이프·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 카드(smart card)”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매체[기록되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8523호),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무선적외선원격제어장치(제8543호)
- (e) 제93류의 무기와 그 밖의 물품

[95.01]

[95.02]

95.03 -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바퀴가 달린 완구(wheeled toy)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 · 수동식 레버 · 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

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어린이용 세발자전거와 이와 유사한 것(단, **제8712호**의 이륜 자전거를 **제외한다**)
- (2) 어린이 · 청소년 · 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이나 비조절 두발이나 세발 스쿠터 · 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 · 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
- (3) 동물형태의 것으로서 페달식이나 수동식으로 추진되는 바퀴달린 완구
- (4) 소형의 스포츠차 · 지프차 · 화물자동차 등의 형태를 한 페달차
- (5) 수동식 레버에 의하여 추진되는 바퀴달린 완구
- (6)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기계식 전달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로 끌거나 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어린이가 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것
- (7)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어린이용 차

(B) 인형용 차(dolls' carriage)(예: 인형용 스트롤러)(접는 형의 것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인형의 탈 것을 포함한다. 접이식인지에는 상관없다. 유모차 · 보행기처럼 바퀴가 둘 이상 달린 것이나 인형용 침대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캐리지용 베딩도 포함한다.

(C) 인형(doll)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부인의 내실용 인형 · 마스크트 인형) · 인형극이나 꼭두각시놀음용 인형 · 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

인형은 대개 고무 · 플라스틱 · 방직용 섬유재료 · 왁스 · 도자기 · 목재 · 판지 · 혼용지(papier maché)나 이러한 재료의 결합물로 만들어진다. 인형은 사람 목소리 등의 재생은 물론 손 · 발 · 머리 · 눈 무브먼트(movement)의 기구를 결합하거나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인형은 또한 옷을 입힌 것도 있다.

이 호의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머리 · 몸통 · 발 · 눈 (**제7018호**)의 부착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눈의 작동기구 · 목소리 재생이나 그 밖의 기구 · 가발 · 인형의 옷 · 신발과 모자

(D) 그 밖의 완구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위 (A)와 (C)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
- (ii) 완구용의 권총과 총
- (iii)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 (iv) 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기차(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비행기·보트 등과 그 부속품(예: 철로·신호기)
- (v) 어린이 탈 것이나 바퀴가 달리지 않은 것(예: 흔들 말)
- (vi) 비전기식 완구용 모터·완구용 증기기관 등
- (vii) 완구용 기구와 완구용 연
- (viii) 장난감 병정과 이와 유사한 것과 완구용 무기
- (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 ; 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
- (x) 완구용 공구 ; 어린이용 외바퀴 손수레
- (xi) 완구용 영화 기기·환등기 등 ; 완구용 안경
- (xii) 완구용 악기(피아노·트럼펫·드럼·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디온·실로폰·뮤지컬박스 등)
- (xiii) 인형용 집과 가구(침구를 포함한다)
- (xiv)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 (xv) 완구용 주판(acaci)
- (xvi) 완구용 재봉기
- (xvii) 완구용 시계
-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
- (xix) 완구용 굴렁쇠, 줄넘기용 줄(제9506호의 것을 제외한다), 공중팽이와 채, 실패와 소리 내는 팽이, 공(ball)[제9504호나 제9506호의 공(ball)은 제외한다]

- (xx) 주로 그림·완구나 모형으로 구성된 책이나 시트(sheet)(절단용이나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완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제4903호 해설 참조)
- (xxi) 완구용 대리석(예: 여러 가지 형태로 무늬가 새겨진 유리 대리석이나 어린이 오락용으로 상자에 넣는 모든 종류의 유리 구)
- (xxii) 완구용 저금상자 ; 유아용 딸랑이·뚜껑을 열면 괴상한 물건이 불쑥 튀어나오는 상자(jack-in-the-box) ; 완구용 극장[상(像)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등
- (xxiii)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난감 텐트
- (xxiv) 장난감 식탁용품과 그 밖의 장난감 가정용품 ; 장난감 상점이나 이와 비슷한 것, 장난감 농장 구내 세트 등

위의 제품들 중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

어떤 완구(예: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use)”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

(E) 축소모형(reduced-size : “scale”)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recreational model)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보트·비행기·철도·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제9504호**의 경기용 게임용구의 특성을 갖는 것[예: 슬롯 레이싱 모터카(slot-racing motor car)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은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실물 크기의 물품이나 확대 재생품을 포함한다(**단**, 오락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F) 모든 종류의 퍼즐(puzzles of all kinds)



수집품(개별물품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은 그들이 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모양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예: 화학용 세트·재봉세트 등과 같은 교육용 완구)은 이 호로 분류한다.

또한, 이 류의 주 제4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류의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결합한 물품으로서 별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그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 (a) 결합된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되지만, 그러나 그 조합이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 의해 하나의 세트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며 ; 그리고
- (b) 조합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을 것. 그러한 조합은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과 중요성이 적은 하나 이상의 물품(예: 작은 판촉용 물품이나 적은 양의 과자류)으로 구성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형태·구성 재료·단순한 디자인면에서 **제9208호**의 뮤지컬박스로 사용될 수 없는 뮤지컬박스 무브먼트(musical box movement)
- (2) 소형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그 밖의 기관(**제8501호**의 전동기는 **제외한다**)(예: 모형비행기나 모형선박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특히 배기량과 동력이 작고 무게가 가볍고 치수가 작은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어린이용의 페인트(**제3213호**)
- (b) 어린이 오락용의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제3407호**)
- (c) 어린이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제4903호**)
- (d) 전사지(**제4908호**)
- (e) **제8306호**의 벨(바퀴달린 다른 장난감용이나 세발자전거용 벨 포함한다)·징이나 이와 유사한 것
- (f) 무인기(**제8806호**)
- (g) 인형이 붙어 있는 소리상자(**제9208호**)
- (h) 게임용 카드(**제9504호**)
- (ij) 종이모자·블로우아웃(blow-out)·가면·가비(false nose)와 이와 유사한 것(**제9505호**)
- (k) **제9609호**의 어린이용 크레용과 파스텔
- (l) **제9610호**의 석판과 흑판
- (m) 쇼윈도 옷 전시용 인형(**제9618호**)
- (n) 육체훈련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 당구용구 ·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 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9504.20 -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9504.30 -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9504.40 - 오락용 카드

9504.5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950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러 가지 형태의 당구대(다리가 달린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와 그 부속품(예: 당구큐 · 당구큐 받침대 · 당구공 · 당구초크 · 볼식이나 슬라이드식의 채점기). 다만, 이 호에는 기계식 계산기 [롤러식의 것과 이와 유사한 것(제9029호)]과 유희시간이나 이에 수반된 요금을 제시해 주는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가 부착된 계기(제9106호)와 당구큐 랙(billiard-cue rack) (제9403호나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은 제외한다.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이)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 · 게임 카트리지 · 게임 조종기 · 운전대(steering wheel)]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제84류의 주 제5호가목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선택가능한 주변장치(키보드 · 마우스 · 디스크 기억장치 등) (제16부)

(b) 게임 소프트웨어가 기록되어 있고 전적으로 이 호의 게임기에만 사용하는 광학 디스크(제8523호)

(3) 게임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형의 대(예: 윗면에 서양장기반면을 갖춘 테이블)

(4) 카지노용이나 실내게임용의 특수 테이블[예: 룰렛(roulette)용이나 모형 경마용] ; 카지노용 갈퀴 등

(5) 탁상용 축구용구나 이와 유사한 게임용구

- (6) 실내오락장·카페·유희장 등에서 사용하는 기교나 기회를 겨루는 경기용의 코인·지폐·은행 카드·토큰·그 밖의 지불수단으로 작동되는 기계(예: 권총연습용의 기계나 여러 가지 형태의 핀테이블)
- (7)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모터와 전기기계적 장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서 “자동식의 볼링 게임장용구(automatic bowling alley equipment)”란 핀이 삼각형으로 정렬되게 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장치(예: 핀이 사각형으로 정렬되게 하는 장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8) 구주희(九柱戲 : skittle)와 실내 크리켓용구
- (9) 슬롯레이싱모터카(slot-racing motor car)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로서 경기용의 특성을 갖는 것
- (10) 다트판과 다트
- (11) 모든 종류의 게임용카드[브리지(bridge)·타로우(tarot)·“렉시콘(lexicon)” 등]
- (12) 체스(서양장기)·체커(draughts)·도미노(dominoes)·마작(mah-jong)·햐머(halma)·루도(ludo)·뱀과 사다리 게임(snakes and ladders) 등의 게임용의 반(盤 : board)과 구(駒 : piece)(체스의 구·체커의 구 등)
- (13) 이 호의 게임용구의 공통부속품. 예: 주사위(dice)·주사위 상자·계수기(計數器 : counter)·슈트 표시기(suit indicator)·특별히 제작한 경기용 포(예:롤렛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복권·“스크래치 카드(scratch card)”·래플(affle) 티켓·톰볼라(tombola) 티켓(보통 **제4911호**)
- (b) **제94류**의 카드 테이블
- (c) 음향장치를 내장한 의자로서 DVD·음악 CD·MP3·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나 비디오게임 콘솔·비디오 게임기·텔레비전이나 위성 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제9401호**)
- (d) 퍼즐(**제9503호**)



[소호해설]

소호 제9504.50호

이 소호에는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다른 지급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 이러한 것들은 소호 **제9504.30호**에 분류한다.

95.05 - 축제용품 · 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950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축제용품 · 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실내 · 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 · 제등 등)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 박편 · 채색된 구(球) · 동물과 그 밖의 모양 등] ;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 · 깃발)
- (2)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예: 인조 크리스마스트리 · 예수의 탄생도와 동물 · 천사 · 크리스마스 크래커 · 크리스마스 양말 · 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 · 산타 크로스
- (3) 가장용품[예: 가면 · 가짜귀(false ear) · 가짜코(false nose) · 가발 · 가짜 콧수염과 가짜 턱수염(제6704호의 가수염류의 제품은 제외한다)과 종이모자].
- (4) 종이나 원면으로 만든 드로우볼(throw-ball)과 종이장식 리본[카니발 테이프(carnival tape)] · 판지제의 트럼펫 · “블로우아웃(blow-out)” · 색종이 조각 · 카니발 우산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교회의 장식용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작은 조각상과 조상(彫像)과 이와 유사한 것
- (b) 실용기능이 있으면서 축제의장(意匠 : design) · 장식 · 엠블럼(emblem)이나 모티프(motif)를 가진 물품, 예를 들면, 식탁용품 · 주방용품 · 화장실용품 · 카펫과 그 밖의 섬유로 된 바닥덮개 · 의복 · 침대린넨 · 식탁린넨 · 화장실 린넨 · 주방 린넨
- (c) 카니발용 · 축제용으로 디자인된 모자(내구성있는 재료로 만든 것으로서 실용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65류)

(B) **마술용품과 기술(奇術 : conjuring trick)용품**[예: 한 벌의 카드 · 테이블 · 칸막이 · 용기로서 특별히 기술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 ; 마술용구[예: 재채기나게 하는 가루(sneezing powder) · 깜짝 놀래는 과자 · 분수구가 달린 단추 · 물속꽃(“Japanese flower”)]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천연의 크리스마스트리(제6류)
- (b) 양초(candle)(제3406호)
- (c) 축제기간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제나 종이제 포장(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예: 제39류나 제48류)
- (d) 크리스마스 트리의 스탠드(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e) 제6307호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와 깃발
- (f) 모든 종류의 조명용 스트링(제9405호)

95.06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ing pool)용품

-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 -- 스키

9506.12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9506.19 -- 기타

-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 -- 세일보드(sailboard)

9506.29 -- 기타

-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9506.32 -- 골프공

9506.39 -- 기타

9506.40 - 탁구용구

-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51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59 -- 기타

-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 론테니스(lawn-tennis) 공

9506.62 -- 공기주입식의 것

9506.69 -- 기타

9506.70 -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 기타

9506.91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9506.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 철봉과 평행봉 ; 평균대·안마 ; 포멀호오스(pommel horse) ; 도약판 ;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 늑목(wall bar) ; 곤봉(Indian club) ; 아령과 바벨 ;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 로잉(rowing)·사이클링과 그 밖의 훈련용 장비 ; 흉곽확장기(chest expander) ; 핸드 그립(hand grip) ; 스타팅 블록 ; 허들(hurdle) ; 도약대와 받침 ; 장대높이뛰기용 장대 ; (장대높이뛰기의) 모래밭 착지용 패드(landing pit pad) ; 투창용의 창·원반·해머던지기용 해머와 포환 ; 펀치 볼 (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 ; 스포츠 활동과 피트니스 클래스용으로 설계된 줄넘기용 줄

(B)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품(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한다). 예:

- (1)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예: 스키파스닝(ski-fastening : ski-binding)·스키브레이크·스키폴]
-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품[예: 다이빙 대(플랫폼)·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용 마스크·수영용이나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보통 스노클(snorkel)로 알려져 있다)]
- (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예: 골프공·골프티(tee)]
- (4) 탁구용구[예: 탁구테이블(다리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배트(패들)·공·네트]
- (5) 테니스 라켓·배드민턴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예: 스퀘시 라켓)(줄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을 제외한다)[예: 테니스공·축구공·럭비공·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커버(cover)를 포함한다) ; 수구·야구·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 크리켓공]
- (7)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 (8) 하키·크리켓·라크로스(lacrosse) 등에 사용하는 스틱과 배트 ; 치스테라(chistera)[하이알라이 스크(jai alai scoop)] ; 아이스하키용 퍽(puck) ; 컬링 스톤(curling stone)
- (9) 여러 가지 게임용(테니스·배드민턴·배구·축구·야구 등) 네트
- (10) 펜싱용구 : 펜싱포일(foil)·사브레(sabre)·라피에르(rapier)·이들의 부분품[예: 칼날·가드(guard)·손잡이와 버튼과 스톱] 등
- (11) 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 (12) 어린이 놀이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용구. 예: 그네·미끄럼틀·시소·회전그네
- (13) 운동용이나 게임용의 보호용구. 예: 펜싱마스크와 가슴받이·팔꿈치와 무릎 보호구·크리켓 패드·정강이받이·보호구와 패드가 내장된 아이스하키 팬츠
- (14) 그 밖의 물품과 용구[예: 텍(deck) 테니스·고리 던지기 용품이나 공굴리기 용품 ; 스케이트 보드 ; 라켓용 프레스 ; 플로나 크로켓용의 공치는 방망이 ; 부메랑 ; 얼음 도끼 ;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 붓슬레이(붓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눈 위에서나 얼음 위에서 사용하는 전동식이 아닌 탈 것]

(C) 수영장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의 용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테니스 라켓용 줄·그 밖의 라켓용 줄(**제39류·제4206호나 제11부**)
- (b) **제4202호·제4303호·제4304호**의 운동용구 백(bags)과 그 밖의 용기
- (c) 운동용 장갑·병어리 장갑(일반적으로 **제4203호**)
- (d) 경기장 울타리용 넷트와 축구·테니스용 등의 휴대용 망대(網袋 : net carrying-bag)(일반적으로 **제5608호**)
- (e) **제61류나 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운동복(팔꿈치, 무릎,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나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펜싱복이나 축구 골키퍼용 저지)
- (f) **제6306호**의 보트·세일보트·핸드크라프트용의 돛
- (g) **제64류**의 운동화(스케이트가 부착된 아이스나 롤러스케이트 부츠를 **제외한다**)와 **제65류**의 운동용 모자
- (h) 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것(**제6602호**)과 그 부분품(**제6603호**)
- (ij) **제17부**의 운동용 선박[예: 마린제트(marine jet)·카누(canoe)와 스키프(skiff)]와 운동용 차량[봄슬레이(봄슬레드)·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 (k) 잠수용 안경·그 밖의 보호용 안경(**제9004호**)
- (l) **제9018호**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그 밖의 기기
- (m) 기계요법용 기기(**제9019호**)
- (n) 산소나 압축공기병을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용 기기(**제9020호**)
- (o) **제91류**의 운동용에 사용하는 물품
- (p) 모든 종류의 볼링용구(자동식의 볼링 게임용의 용구)와 그 밖의 실내게임·테이블이나 게임용의 용구(**제9504호**)
- (q)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액티비티 풀(activity pool)과 파도풀(wave pool)로서, 오락을 위해 물을 순환시켜 설정된 경로를 따라 탑승자를 이동시키거나 미끄러지게 하거나 또는 파도와 물흐름을 생성하는 것(**제9508호**)

95.07 - 낚신타 · 낚신타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 · 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7.10 - 낚신타

9507.20 - 낚신타바늘(낚신타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9507.30 - 낚시 릴

9507.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모든 종류의 (예: 하나나 다수의 바늘이 있는 것) 그리고 모든 크기의 **낚신타바늘** : 이러한 것은 보통 강(鋼)으로 구조되는데, 청동 · 주석 · 은 · 금을 도금할 수 있다.
- (2) **낚시용 망과 포충망(捕蟲網 : butterfly net)과 이와 유사한 망** : 보통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이나 코드로 만든 주머니모양(pocket-like)의 망으로서 선(wire)으로 된 지지용구에 부착되고 자루에 고정되어 있다.
- (3) **낚신타와 낚시용구** : 낚신타는 여러 가지의 크기와 재료[대나무 · 목재 · 금속 · 유리섬유(glass fibre) · 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이나 여러 개를 이어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예: 릴(reel)과 릴 부착구; 인조 미끼(예: 물고기 · 파리 · 곤충 · 벌레 모양의 것)와 이러한 미끼를 끼운 낚신타바늘; 스피닝 베이트(spinning bait); 낚신타에 부착된 낚신타줄과 캐스트; 낚시찌[코르크(cork) · 유리 · 깃촉(quill) 등] (형광도료를 칠한 찌를 포함한다); 낚신타줄 감는 틀; 자동어자(魚刺 : automatic striking) 기구; 낚신타에 부착된 낚시용 링(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링을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봉돌(sinker)과 외부 격쇠 · 클립이나 그 밖의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된 낚신타대의 중
- (4) **특정의 수렵용구** : 예를 들면, 조류 유인용 새(devoy “bird”)[다만, 여러 가지의 테코이 콜(decoy call)(**제9208호**)이나 **제9705호**의 박제된 조류를 **제외한다**]와 라크미러(lark mirror)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인조파리 제조용의 새의 깃털(**제0505호**나 **제6701호**)
- (b) 실 · 모노필라멘트 · 코드 · 천연이나 인조의 거트(gut)로서 길이로는 절단되었으나 낚신타줄로 완성되지 않은 것(**제39류 · 제4206호 · 제11부**)
- (c) **제4202호 · 제4303호 · 제4304호**의 운동용구 백(bag)과 그 밖의 용기(예: 낚신타 케이스와 경기용구 백)
- (d) 낚신타에 부착되지 않은 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e) 텃 · 올가미 등(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f) 외부 격쇠 · 클립이나 그 밖의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낚시 용구용 비전기식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제8306호**)
- (g) 클레이 표적(**제9506호**)

95.08 -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 용품

-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 9508.21 -- 롤러코스터
- 9508.22 -- 회전놀이기구·그네·회전목마
- 9508.23 -- 범퍼카(Dodge'em car)
- 9508.24 --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 9508.25 -- 물놀이용 탈것
- 9508.26 -- 워터파크 놀이기구
- 9508.29 -- 기타
- 9508.30 - 유원지용 오락물
- 9508.40 - 순회극장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 또한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물품(예: 천막·동물·악기·동력플랜트·전동기·조명구·좌석과 무기와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하고** 여러 가지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에 따라** 흥행용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전용(專用)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예: 그네와 워터 슈트(water-chute)용의 보트]은 분리하여 제시하더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놀이공원의 탈것과 워터파크 놀이기구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 이들은 특별한 차량을 사용하며, 탑승자를 자리에 앉혀서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 설계된 패턴으로 상승과 하강을 하는 트랙을 따라 이동하게 하는데, 때때로 한번 이상의 반전(反轉)(예: 수직 루프)이 동반된다. 롤러코스터는 차량이 한 대일 수도 있고 여러 대일 수도 있다.
- (2) 회전놀이기구(carousel)·그네(swing)·회전목마(roundabout) : 이들은 통제되고, 고정된 코스나 트랙을 따라 단일 레벨로 작동한다.
- (3) “도지엠 카(dodge'em car)”나 범퍼카(bumper car)
- (4) 모션 시뮬레이션 기기(motion simulator)와 무빙씨어터(moving theatre) : 이들은 좌석 플랫폼이 있는 탈것(ride)으로서, 관객의 좌석은 탈것의 광경과 동작에 따라 움직이고 관객은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을 경험한다.
- (5) 물놀이용 탈것(water ride) : 이들은 물 순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탑승자가 타고 있는 운송 수단을 설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하거나 미끄러지게 하는데, 탈것의 움직임은 탑승자의 몸 전체 또는 일부를 물에 담글수 있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담그게 한다.
- (6) 워터파크 놀이기구(water park amusement) : 이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건설된 수로를 따라 물과 관련된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미끄럼틀·수중 놀이 기구(기어오르기·기어오르기 방지)·복합 수중 놀이 구조물·사용자 조정가능 기구(user controls)·물 뿌리개(water spray)·분수·파도 발생 기구(wave action)·레저용 강(leisure river)·소용돌이 풀(vortex pool)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유원지용 오락물(fairground amusements)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사격게임장·코코넛 맞히기·동전 던지기·미로(迷路)·복권(福券)[예: 운명의 수레바퀴(wheels of fortune)]과 같이 운(運), 힘이나 기량을 겨루는 게임. 이들은 보통 기사나 안내원이 있으며 영구적인 건물(permanent buildings)이나 독립된 구내상점(independent concession stalls) 안에 설치된다. 유원지용 오락물에는 제9504호·제9506호의 설비나 이 류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 해당하는 흥행장 게임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모든 종류의 회전목마(roundabout)
- (2) “도지엠(Dodge'em)” 카 설비
- (3) 워터슈트(water-chute)
- (4) 소형 유람철도와 활주대
- (5) 그네형의 보트
- (6) 표적용구와 코코넛샤이(coconut shy)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상품판매(과자와 그 밖의 물품 등)용·광고용·교육용·이와 유사한 전시용의 이동 매점(travelling stall)
- (b) 트랙터와 그 밖의 운반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되고 유원지용 오락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예: 링-스탠드 트레일러(ring-stand trailer)]
- (c)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기계(**제9504호**)
- (d) 현상품으로 배분하는 물품

제 96 류

잡 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 나. 제66류의 물품[예: 산류(傘類)나 지팡이의 부분품]
 - 다.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마. 제82류의 칼붙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조각용이나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와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나 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바. 제90류의 물품[예: 안경테(제9003호), 제도용 펜(제9017호), 치과용이나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 특수 브러시(제9018호)]
 - 사.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 아. 악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제92류)
 -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 카.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堅果)·근경(根莖)·껍질·너트(nut)와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상아야자와 돔(dom)]
 - 나. 호박·해포석(meerschaum)·응결시킨 호박과 응결시킨 해포석(meerschaum)·흑옥과 광물성 흑옥 대용물
3. 제9603호에서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이란 동물의 털·식물성 섬유나 그 밖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비나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끝 부분에 트리밍(trimming)과 같은 추가적인 단순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나 제9615호는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6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와 제9615호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경미한 부분에만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총설

이 류에는 조각과 성형용 재료와 그 제품·비·브러시와 체·잡화류·필기구와 사무용품·흡연용품·화장용품·위생용 흡수 제품[재료에 상관없이 위생 타월(패드)와 탐폰, 냅킨과 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을 분류한다.

제9607호부터 제9614호까지와 **제9616호부터 제961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제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와 **제9615호**에 열거된 물품은 이들 재료가 **경미한 부분**으로서만 결합되기도 한다.

96.01 - 가공한 아이보리(ivory) · 뼈 · 귀갑(龜甲) · 뿔 · 가지진 뿔 · 산호 · 자개 ·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9601.90 - 기타

이 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의 재료와 관련이 있다(제9602호에 열거된 것은 **제외한다**). 동물성 재료는 주로 조각이나 절단에 의해서 가공하며 대부분의 것은 성형하여 제조한다.

이 호에서 “가공(worked)”이란 해당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제0505호부터 제0508호까지 해설 참조). 그러므로 이 호에는 아이보리(ivory) · 뼈 · 귀갑(龜甲 : tortoise-shell) · 뿔 · 가지진 뿔 · 산호 · 진주 모패(母貝) 등으로서 시트 · 판 · 봉 등의 모양의 것, 일정한 모양으로 절단시킨 것(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연마된 것이나 그라인딩(grinding) · 드릴링(drilling) · 밀링(milling) · 터닝(turning) 등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이러한 부분품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피아노건반에 사용하는 판모양의 것과 화기(火器)의 밑부분에 삽입시키는 판모양의 것은 각각 **제9209호**와 **제9305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가공된 재료는 이 호로 분류한다[예: 상감세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아노 건반의 제조에 사용하는 간단한 원판 · 판 · 스트립(strip)].

아래의 재료가 가공품이나 제품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한** 이 호로 분류한다.

- (I) 아이보리(ivory) : 이 표에서 코끼리 · 하마 · 바다코끼리(walrus) · (일각과의)고래 · 멧돼지의 엄니 · 코뿔소의 뿔과 모든 동물의 이(teeth)는 아이보리(ivory)로 간주한다(제5류의 주 제3호 참조).
- (II) 뼈 : 많은 동물의 체(體)의 경질(硬質)부분인 뼈는 오로지 절단시킴으로써 가공한다.
- (III) 귀갑(龜甲) : 귀갑(龜甲)은 거의 전적으로 바다거북(turtle)에서 얻어진다. 이는 대황색 · 대갈색이나 흑색을 띠고 있으며 높은 가연성(可燃性)이 있어서 가열할 때에는 높은 연성(延性)이 나타나고 냉각할 때에는 주어진 모양을 유지한다.
- (IV) 뿔과 가지진 뿔 : 반추동물의 앞이마에서 얻어진다[각수(角髓 : horn-core)는 조각용이나 성형용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젤라틴 제조에 사용한다].
- (V) 천연 산호[해서(海棲) 폴립 즉, 해서폴립(marine polyp)의 석회질의 골]와 응결 산호
- (VI) 진주 모패(母貝) : 내층이 무지개빛의 진주광택으로 덮여진 어떤 종류의 패각으로서 ; 그 표면은 파문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나 실은 매우 매끄럽다.
- (VII) 발굽 · 손톱 · 발톱 · 부리
- (VIII)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로부터 얻어지는 뼈와 유사 물질
- (IX) 깃털(quills of feathers)
- (X)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껍질(shell)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가공한(worked) 동물성 조각용 재료**

이 호에 열거된 조각용 재료는 세정하거나 부속물을 제거하거나, 쓸모없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히 톱질하거나, 절단[때로는 이어서 황삭(荒削 : rough planing)을 한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백·펼침·트리밍(trimming)이나 분할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따라서 귀갑(龜甲)은 똑바르게 하고 귀갑(龜甲)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것[미가공용의 귀갑(龜甲)은 보통 평평하지 않은 두께와 만곡된 표면을 가진 시트(sheet) 모양으로 제시됨으로 이 최후의 방법은 예외적이다]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0507호 part(B) 해설 참조)**. 외각(外殼)만을 **제외**한 산호는 동일하게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0508호)**.

또한 성형품(moulded products)은 귀갑(龜甲)의 스케일, 판, 발톱이나 이 호의 조각용 재료의 가루나 웨이스트(waste)에서 얻어지는 재생재료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어떤 모양의 것 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귀갑(龜甲)의 특성의 하나는 특수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열에 의하여 상호접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얇은 스케일을 접착시킴으로써 비교적 두꺼운 판을 만들고 이것을 재료로 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뿔의 특성은 가열하면 연화에(軟化)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되거나 페이스트의 농도(pasty consistency)로 될 수 있다는 것이며 ; 따라서 귀갑(龜甲)과 같은 방법으로 성형하여 가공할 수 있다.

단추 블랭크(button blank)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연마하거나 연마하지 않은 디스크(**제9606호** 해설 참조)와 예루살렘 진주(Jerusalem pearl)[즉, 부정형(不整形) 진주 모패(母貝)의 비드(bead)로 단순히 구멍이 뚫려 있으나 연마되지 **않고**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으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임시적으로 실이 꿰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B) **이 호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시가케이스나 담배케이스·코(snuff)담배갑·화장(powder)갑·버클·걸쇠·립스틱 케이스
- (2) 브러시용의 자루나 부착구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
- (3) 여러 가지 종류의 상자와 구중향정(口中香錠 : cachou) 상자·시계의 보호용 커버
- (4) 제82류의 공구·칼·포크·면도칼 등의 자루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
- (5) 종이칼·편지여는 도구·서표(書標 : book-marker)
- (6) 사진·회화 등의 틀
- (7) 북커버
- (8) 종교용품
- (9) 뜨개질 편물용의 갈고리 바늘(crochet hook)과 메리야스 침(knitting needle)

- (10) 작은 장신구(예: **제9703호**의 것 **이외의** 자질구레한 장신구 조각용 물품)
- (11) 구두주걱(shoe horns)
- (12) 식탁용품(예: 칼 받침대 · 작은 스푼과 냅킨 링)
- (13) 빨과 가지진 빨을 부착시킨 장신구(트로피 등)
- (14) 신변장신용품으로 구성되지 **않는** 카메오(cameo)와 인탈리오(intaglio)

이 호에는 특수한 조개껍질로 만든 제품, 우축(羽軸 : quill of feather)으로 만든 제품[예: 이쑤시개와 시가용 팁(tip)]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단순히 길이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 가공하지 않은 우축(羽軸)(**제0505호**)과 낚시용 찌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우축(**제9507호**)은 **제외한다**.

동물성 조각용 재료를 표면에 피복하거나 상감세공(inlaid)한 제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단, 표면을 피복하거나 상감세공한(inlaying) 것이 완성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목제상자 · 보석상자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보리(ivory) · 뼈 · 귀갑(龜甲) · 빨로 표면을 피복하거나 상감세공 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제66류**의 물품[예: 우산 · 양산 · 지팡이 등의 부분품(예를 들어, 자루 · 축(stem) · 선단부(tip)]
- (b) 틀이 붙은 유리거울(**제7009호**)
- (c) 동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으로서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이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 · 합성 · 재생의 것)(**제71류**), 천연이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 · 합성 · 재생의 것)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경미한 부분에만 사용한 제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예: 문자 · 이니셜(initial) · 테(ferrule) · 외륜(rim) 등]
- (d)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 (e) **제82류**의 칼붙이나 그 밖의 물품(조각용이나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나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 **그러나** 이러한 자루와 그 밖의 부분품이 별도로 제시된 때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 (f) **제90류**의 물품[예: 쌍안경 ; 안경 · 코(鼻)안경 · 손잡이 달린 안경 · 고글 · 이와 유사한 물품용의 프레임과 부착구 · 이들의 부분품]
- (g) **제91류**의 물품[예: 클럭(clock) 케이스]. 다만, 시계의 보호용 커버는 이 호로 분류한다.
- (h) **제92류**의 물품. 예: 악기와 그 부분품[수렵용의 호각(horn), 피아노나 아코디언용의 키(key), 페그(peg), 브리지(bridge) 등]
- (ij) **제93류**의 물품(예: 무기의 부분품)
- (k)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 조명기구)
- (l) **제95류**의 물품(예: 완구 · 게임용구 · 운동용구)
- (m) **제9603호**(예: 비와 브러쉬)와 **제9604호**의 물품. 다만, 브러시용 자루나 부착구가 별도로 제시된 때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제20부
96.01

- (n) 제9605호·제9606호·제9608호·제9611호나 제9613호부터 제9616호까지의 물품(예: 단추와 단추 블랭크; 만년필·펜홀더 등; 흡연용 파이프·파이프의 대통·축과 그 밖의 부분품; 시가홀더·시가렛 홀더와 이들의 부분품; 빗)
- (o) 제97류의 물품(예: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 동물학에 관한 수집품 등)

96.02 -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가공(worked)”의 정의는 제9601호의 해설 두 번째 단락이 이 호에 준용된다(예: 제1404호·제1521호·제2530호·제2714호·제3404호·제3407호·제3503호의 해설 참조)

(I) 가공한(worked)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A)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

이 그룹에는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열거된 가공한 식물성의 조각용 재료를 분류한다. 이러한 재료에는 상아야자[“식물성 아이보리(vegetable ivory)”로 알려져 있다], 돔팜(dom palm)의 견과류와 이와 유사한 팜의 견과류[타히티(Tahiti), 팔미라(Palmyra) 등], 코코넛 셸(shell), 갈대(Indian shot)의 변종인 카나 인디카(*Canna indica*)의 종자, 아브러스 프레카토리우스(*Abrus precatorius*)나 비트트리(bead tree)의 종자, 대추의 핵, 올리브의 핵, 피아사바 팜(piassava palm)의 종자, 로커스트 콩(locust bean)의 종자를 포함한다.

또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가루를 형성하여 생산한 제품을 포함한다.

(B) 가공한 광물성 조각용 재료

이 그룹에는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열거된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2530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i) 해포석(海泡石)이나 호박(amber)의 덩어리 조각(粗塊 : rough block)

(ii) 응결하거나 성형할 때 천연의 해포석과 호박의 웨이스트(waste)로부터 얻은 응결한 해포석과 호박(판·봉·막대기·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서 성형 후에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아래에 기술된 제외규정에 **따라**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을 포함한다.

(i) 작은 장식용품(예: 작은 조각상)

(ii) 상자와 보석상자같은 작은 물품

(iii) 디스크(disc)(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단추 블랭크는 **제외한다**. **제9606호** 해설 참조)

(II) 성형품(moulded article)이나 조각품(carved article)
[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natural gum)·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unhardened)(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이 그룹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성형품(moulded article)과 조각품(carved article)을 포함한다
[단,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예: 플라스틱제품 : 제39류나 에보나이트제품 :
제40류)].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포함한다
(제3503호나 제49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료에 있어서 “성형품(moulded article)”이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한편, 블록·입방체·판·봉 등의 모양으로 성형한 재료(성형하는 동안에 눌러
새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제외한다.

아래에 열거한 제외사항을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왁스(wax)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
 - (i) 인조벌집
 - (ii) 전기도금용의 성형제품
 - (iii) 조화·모조낙엽이나 모조과일 :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것이나 제6702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제조방법(예: 결속·접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립시킨 것
 - (iv) 흉상·두상·전신상이나 작은 조각상[마네킹(tailors' dummy)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은
제외하고(제9618호 해설 참조), 오리지널조각이나 조상(彫像)도 제외한다(제9703호
해설 참조)].
 - (v) 왁스진주
 - (vi) 왁스를 기본재료로 하여 조제되는 T형관으로서 외과수술에 사용하는 것
 - (vii) 창장식용 왁스의 모조과자·초콜릿 등의 판과 그 밖의 모조제품
 - (viii) 면(cotton wool)지지물 위에 왁스를 부착한 귀마개
 - (ix) 목재로 만든 주형의 갭(gap)을 충전시키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둘러싼 왁스로
만든 스트립
- (2) 파라핀왁스(paraffin wax)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특히 플루오르화수소산 용기)
- (3) 스테아린(stearin)으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
- (4) 로진(rosin)으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예: 바이올린 활에 사용하는 로진)
- (5) 코펠(copal)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보통 호박제품의 모조품)
- (6) 모델링왁스(modelling wax)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예: 일체로 성형된 꽃이나 식물, 상
(像)·작은 조각상·이와 유사한 장식품)

- (7) 분말이나 전분을 기본재료로 하여 겹을 응고하고 래커를 도장하여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 (일체로 성형한 조화·모조과일, 작은 조각상 등)
- (8)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으로 만든 시트(sheet).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시트(표면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3503호나 제49류**(예: 엽서)에 분류한다(제3503호의 해설 참조).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당구큐의 팁(tips)용 작은 디스크
 - (ii) 의약품품과 기계식ライター용 연료용의 캡슐

*
* *

식물성이나 광물성의 조각용이나 성형용의 재료의 표면에 피복하거나 상감세공한 제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단**, 표면을 피복하거나 상감무늬를 넣은 것이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목제상자·보석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호에 열거된 재료로 표면이 피복하거나 상감세공 할 수 있다.

*
* *

제9601호에서 **제외하는** 제품에 대한 제9601호 해설 규정은 이 호에도 적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실링왁스(sealing wax)(병봉인용 왁스를 포함한다)(**제3214호나 제3404호**)
- (b) 파라핀이나 그 밖의 왁스·스테아린(stearin) 등으로 만든 양초·이와 유사한 물품(**제3406호**)
- (c)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어린이 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印象)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관상·말굽상·봉상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제3407호**)
- (d) 젤라틴을 기본재료로 한 카핑페이스트(copying paste)(**제3824호**)
- (e) 토탄(peat)으로 만든 성형품(**제6815호**)
- (f) 전시용 모형(**제9023호**)

96.03 -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 9603.1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9603.21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 9603.29 -- 기타
- 9603.30 -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 9603.40 - 페인트용·디스토펜퍼(distemper)용·바니시(ve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 9603.50 -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603.90 - 기타

(A)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비교적 조잡하게 만든 물품으로서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주로 지면(가로·구내·마굿간 등)이나 바닥(예: 자동차의 바닥)을 쓰는데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개의 식물성 재료(작은 가지·밀짚 등)를 거칠게 결속한 것이나 하나 이상의 심(core)을 구성하는 굵은 벚짚이나 갈대의 주위에 가늘고 긴 벚짚을 실로 붙들어맨 것으로서; 이러한 방직용 섬유(섬유의 실(textile thread)은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으나 보다 가벼운 재료로 된 파리를 쫓는 채(fly-whisk)도 포함한다.

이러한 비와 브러시는 일반적으로 자작나무·개암나무·감탕나무·히이드나무(heather)나 금작화(broom)의 작은 가지·사탕수수(sorghum)·수수·동백 등과 밀짚[또는 원추화서(圓錐花序 : panicle)]이나 알로에(aloe)의 섬유·야자섬유(야자껍질의 섬유)·종려나무가지[특히 피아사바(piassava)] 등·메밀의 줄기로 제조한다.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 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 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역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

대단히 광범위한 원료가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며 다발 등으로 사용하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a) 동물성의 것 : 돼지나 멧돼지의 거센 털(bristle) ; 말·소·염소·오소리·담비·스핑크·다람쥐·족제비류 등의 털 ; 뿔의 섬유 ; 새의 깃털의 축(軸)
- (b) 식물성의 것 : 개밀류(couch grass)의 뿌리·이스틀리(istle)(또는 Tampico)·코코(coir)야자 열매의 섬유나 피아사바(piassava)섬유·에스파르토 그래스(esparto grass)·사탕수수의 원추나 쪼갠 대나무(split bamboo)
- (c)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것[예: 나일론이나 비스코스레이온]
- (d) 선(철강·황동·청동 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예: 면이나 양모의 실·끈·유리섬유(glass fibre)]

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재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즉, 목재·플라스틱·뼈·뿔·아이보리(ivy)·귀갑(龜甲)·에보나이트·어떤 종류의 금속(강·알루미늄·황동 등)을 사용하며, 어떤 브러시류(예: 기계용의 회전 브러시나 특수한 소재기용의 브러시)에는 가죽·판지·펠트·직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우축(羽軸 : quills of feathers)은 어떤 종류의 페인트 브러시용의 부착대로 사용한다.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경미한 부분**(예: 문자나 테)에만 사용한 브러시는 이 그룹에 분류한다.

천연이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브러시나 경미한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브러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1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dental-plate brush)를 포함한다]
- (2) 면도용 브러시
-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 손톱용 브러시 ; 머리 염색용의 브러시 등) ; 이발사용 목브러시
- (4) 고무나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일체로 만든 화장용(손닦는 것 등)·세면대의 세정용 등의 브러시
- (5) 의류·모자나 구두용의 브러시 ; 빗 세정용 브러시

- (6) 가정용 브러시[예: 스크러빙(scrubbing) 브러시 · 접시닦는 브러시 · 식기세정용 브러시 · 세면대용 브러시 · 가구용 브러시 · 방열기(radiator)용 브러시 · 크럼(crumb)용 브러시]
- (7) 도로 · 마루 등의 소제에 사용하는 비 · 브러시 등
- (8) 방직용 섬유재료의 특수한 세차용 브러시 : 세정제품을 침투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9) 동물 손질용 브러시(말, 개 등)
- (10) 무기 · 자동차 등의 주유용 브러시
- (11) 축음기 레코드용의 브러시[레코드를 자동적으로 소제하도록 사운드암(sound arm)에 부착될 것을 포함한다]
- (12) 타이프라이터(typewriter)의 활자나 타자봉을 소제하는 브러시
- (13) 점화플러그 · 파일(file) · 용접부분 등의 소제용 브러시
- (14) 나무나 관목에서 이끼나 오래된 껍질을 제거하는데 쓰이는 브러시
- (15) 스텐실(stencil)용 브러시(잉크 저장기와 잉크 유량제어기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16) 미장이 · 도장공 · 장식공 · 캐비닛 제조공 · 예술가 등이 사용하는 도장용이나 그 밖의 브러시 [환형(丸型)이나 평면의 것]로서, 예를 들면, 낡은 도장물을 씻어내는 브러시 · 디스탬퍼(distemper)용 브러시 · 벽지용 브러시 · 니스칠용 브러시 등; 수채화나 유화용 브러시 · 색 배합용 브러시 ; 도자기용 브러시 · 채색용 브러시 · 도금용 브러시 등; 소형의 사무용 브러시가 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I) 선에 부착된 브러시(보통 선을 함께 끈 끈) : 예를 들면, 연도(flue)용 브러시 ; 병세정용 브러시나 실린더형의 램프유리 세정용 브러시 ; 관류(tubes · piping)를 세정하는 브러시 등 ; 담배파이프 클리너 브러시, 무기소제용 브러시 ; 악기의 통기통 브러시와 관용의 브러시 등이 있다.
- (II) 기계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 : 예를 들면, 도로청소차용, 방적이나 방적기계용 ; 연마, 광택기계용이나 공구용, 제분이나 제지기계용 ; 시계제조나 보석제공에 쓰이는 선반용 · 가죽 ; 모피, 제화(shoe-making)에 쓰이는 기계용 브러시가 있다.
- (III) 가정 전기기기용 브러시(예: 마루광택기 · 진공청소기)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브러시용의 부착구나 손잡이(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방직용 섬유재료의 연마원반이나 패드(**제5911호**)
- (c) 침포(card clothing)(**제8448호**)
- (d) 자동차료처리기계 등의 디스크 드라이브 세정용 디스켓(**제8473호**)

- (e) 치과용이나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브러시(예: 후두치료용 브러시와 치과용 드릴에 부착된 브러시)(제9018호)
- (f) 완구의 특성을 갖는 브러시(제9503호)
- (g) 화장용 분첩(powder-puff)·화장용 패드(제9616호)

(C)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간단한 제품으로 보통 차륜의 무브먼트(movement)에 의해 작동되는 하나나 다수의 실린더형 브러시를 갖춘 차륜제의 것으로 자루에 의해 수동식으로 작동되며, 특히 양탄자 청소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모터를 갖춘 청소기를 제외한다(제8479호).

(D) 모프(mop)·깃 먼지털이

모프(mops)는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 또는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된다. 어떤 다른 모프는 자루에 연결된 틀이나 그 밖의 받침(base)에 맞추어 달리거나 부착된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이루어진 모프 헤드 패드(mop-head pad)로 구성된다. 모프에는 얼룩이나 용액의 얼룩이 지워지거나, 바닥을 청소하거나, 접시를 닦는 등의 용도를 위하여 건조나 축축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먼지 모프(dust mop), 분무 모프(spray mop), 스펀지 모프(sponge mop)를 포함한다.

깃 먼지털이(feather duster)는 자루에 부착된 깃털의 다발로 구성되며, 가구·선반·쇼윈도 등의 먼지털이에 사용한다. 어떤 다른 형태의 깃 먼지털이의 경우 “깃(feathers)”이 자루 주위에 고정되거나 휘감겨진 양모·방직용 섬유 재료 등으로 바뀐 것도 있다.

손 걸레 용도나 모프헤드(mop-head) 틀이나 그 밖의 받침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청소 걸레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1부).

(E)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이 류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그룹에는 동물의 털(animal hair)·식물성 섬유·인조 필라멘트 등을 묶었거나 술모양의 것으로 소분(小分)하지 않고 바로 부착시켜서 비나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비나 브러시에 부착하기 위하여 앞쪽 끝단에 트리밍(trimming)과 같은 사소한 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것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정돈되지 않은 동물의 털·식물성 섬유·그 밖의 재료의 다발(또는 유사한 모양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정돈된 모(毛)나 섬유일지라도 비나 브러시 상단에 부착하기 전에 좀 더 작은 술(타래)을 필요로 한 것도 제외한다.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주로 면도용 브러시·페인트 브러시(painting brush)와 화필용 브러시(drawing brush)로 사용한다.

단단한 다발로 묶기 위하여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섬유제 물품은 보통 그 길이의 1/4 까지 바니시(vernish)나 그 밖의 도장재료에 침지(dipped)시키며 ; 때로는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톱밥을 첨가한다. 테(collar)(보통 금속제의 것)에 부착된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은 **제외한다(위 (B)그룹)**.

자루에 부착한 후에 그 밖의 완성가공과정(선단을 둥글게 하거나 필요한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섬유의 말단을 연마하는 등)을 거쳐야 하는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물품도 이 그룹에 포함한다.

(F) 페인트용 패드·롤러 ;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롤러(paint roller)는 새끼 양피나 그 밖의 재료로 씌운 롤러에 손잡이를 부착한 것이다.

페인트용 패드(paint pad)는 평평한 면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딱딱한 배면에 직물이 부착되며 ; 손잡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스퀴지(squeegee)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 펠트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을 목재·금속 등의 두 매의 면 사이나 목재·금속 등의 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습기있는 표면을 쓰는 비에 사용한다.

다만, 이 그룹에는 하나 이상의 롤러를 손잡이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진용 롤러 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제9010호)**.

96.04 - 수동식 체와 어레미

“수동식 체(hand sieve)와 어레미(hand riddle)”는 강한 거즈나 그 밖의 망재료(여러 가지의 망목의)를 직사각형이나 원형의 틀(일반적으로 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것)에 부착하여 만든 물품을 말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고형물질(solid)**을 분리하는데 사용한다.

보통 망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마모·인조필라멘트·견사(silk yarn)·방직한 거트(spun gut), 선(강선·철선·황동선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재(cinders)·모래·종자·정원의 토양 등에 사용하는 수동식 체와 어레미,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로 만든 체[예: 고운 가루용]; 가정용 체(예: 고운 가루용); 실험실용 체(시멘트, 성형용 모래·비료·목분 등의 입도 측정용)(망목이 달린 일련의 것을 결합하여 한 조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귀석이나 반귀석(예: 다이아몬드) 선별용 체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체와 어레미(예: 토양이나 자갈을 체질하는데 사용하도록 지면에 설치한 체, 일반적으로 **제7326호**)
- (b) 간단한 체(예: 치즈용)로서 천공된 시트-금속바닥판을 갖춘 용기로 구성된 것; 여과장치가 부착된 깔때기; 밀크체(milk strainer); 페인트, 백색도료, 살균제 용액 등의 여과용 체(일반적으로 **제73류**)
- (c) 기계나 장치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체와 어레미[예: 제분공업용, 농업용, 돌(石)·광석 등의 체용(screening)의 것]. 이러한 물품은 제16부의 주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며, 기계용으로 활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일반적으로 기계류와 동일한 호로 분류한다(예: **제8437호**나 **제8474호**).

96.05 -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표에서 각각 다른 호에 속하는 물품이나 동일호의 다른 물품들로 구성되는 여행세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화장용 세트(toilet sets)** : 가죽 · 직물 · 플라스틱 등으로 된 케이스에 담겨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갖고 있는 것(예: 성형된 플라스틱 박스 · 브러시 · 빗 · 가위 · 족집게 · 손톱 다듬는 줄 · 거울 · 면도날 홀더 · 매니큐어 기구)
- (2) **바느질용 키트(sewing kits)** : 가죽 · 직물 · 플라스틱 등으로 된 케이스에 담겨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갖고 있는 것[예: 가위 · 줄자 · 실끼우개 · 재봉용의 바늘과 실 · 안전핀 · 골무 · 단추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
- (3) **신발청소용 키트(shoe-cleaning kits)** : 가죽 · 직물 · 플라스틱 · 플라스틱으로 덮힌 판지 등으로 만든 케이스에 담겨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갖고 있는 것(예: 브러시 · 구두약 통이나 튜브와 직물제의 청소용 천)

이 호에는 매니큐어 세트를 **제외한다(제8214호)**.

이 호에는 또한 항공사로부터 승객(비행 중이나 도착지에서, 그들의 수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게 나누어주는 직물제 백(bag)의 세트[위 (1)부터 (3)까지에서 언급한 물품, 화장품, 향수나 화장용품, 셀룰로오스 워딩(cellulose wadding)제 손수건, 방직용 섬유제 제품들(예: 파자마 · 티셔츠 · 바지 · 반바지 등)이 안에 들어 있다]를 **제외한다**. 이들 세트의 각 물품들은 **그들의 적당한 해당 호**에 따라 분류한다.

96.06 - 단추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 · 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 단추

9606.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9606.22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9606.29 -- 기타

9606.30 -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이 호에는 의류 · 가정용 린넨(linen) 제품 등을 잠그거나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단추 · 장식용 단추 ·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의 재료와 천연이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 · 합성 · 재생의 것)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단, 이 후자들의 경우에는 재료를 **경미한 부분**에만 사용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은 **제71류**에 분류한다).

단추 · 장식용 단추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한 재료는 비금속(非金屬) · 목재 · 코로조(corozo) · 돔(dom) · 뼈 · 뿔 · 플라스틱 · 도자기 · 유리 · 에보나이트(ebonite) · 압축판지 · 가죽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 아이보리(ivory) · 귀갑(tortoise-shell) · 진주 모패(母貝)이다. 이러한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재료의 결합으로 구성되거나 방직용 섬유직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구멍 뚫린(pierced) 단추와 각부가 긴(shank) 단추** : 사용하는 목적(내의 · 외의 · 신발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크기와 모양의 것이 있다.

구(球) 모양의 단추는 실이 들어가는 구멍이 중심부에 뚫리지 않은 것으로 구슬과는 구별되어진다.

어떤 각부가 긴 단추에서는 그 각부가 단추를 의복에 꿰매지 않아도 채워지는 스프링형의 힌지(hinge)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밖의 형[예: “꿰매지 않고 다는 단추(bachelor buttons)"]은 스냅메카니즘에 의하여 의복에 고정한다.

(B)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 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 :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스냅메카니즘에 의해 작동한다. 이러한 파스너(fastener)와 스터드(stud)는 의류에 바느질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리벳팅(riveting)”[예: 글로브(gloves)용 프레스스터드(press-stud)]하여 부착하는 것이 있다.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와 이와 유사한 것은 분리된 부분이 좁은 테이프의 대에 이미 부착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1) **단추의 몰드(button mould)** : 어떤 단추 형태의 내부의 부분이나 몸체이며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가죽 등으로 피복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것은 단추제조용으로 만든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몰드(mould)는 나무 · 오리스뿌리(orris root) 등으로 만들어지나 보통 두 개의 금속부분으로 구성되며 한쪽 부분은 방직용 섬유 등으로 피복되어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전자에 삽입되어 그 방직용 섬유를 지지하도록 되어 있다.

(2) **단추의 그 밖의 부분품 등으로서 명백하게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예: 생크(shank) · 베이스 · 두부(head)]

(3) **단추 블랭크(button blank)**.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성형에 의하여 만든 것으로서 아직 단추로 사용할 수 없는 **단추블랭크** : 이러한 물품은 보통 깎아 다듬고 구멍을 뚫고 연마하는 공정이 필요하며 단추제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ii) 톱(top)과 베이스(base)의 두 개의 부분품으로 구성되며 양쪽이 꼭 들어맞도록 만든 형태의 **스탬프(stamped) 금속블랭크**

(iii) **진주모패(母貝) · 코로조(corozo) · 목재 등으로 된 블랭크**로서 단추제조용으로 사용될 것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가공된 것**[예: 일면이나 양면을 원형 · 중공(hollow)이나 그 밖의 형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테를 만들고 연마하거나 구멍을 뚫은 것]. 한편 단지 톱으로 켜고 절단하거나 연마한 디스크의 것으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원반모양의 것은 단추블랭크로 취급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커프링크(cuff-link)를 **제외한다(제7113호나 제7117호)**.

96.07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9607.19 -- 기타

9607.20 -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크기와 용도(의류용 · 신발용 · 여행용구 등)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의 대부분은 방직용 섬유 재료로 된 두 개의 좁은 스트립으로 구성되며 각 스트립의 한 가장자리에 스쿠프(scoop)(금속 · 플라스틱 등의 만든 것)가 부착되어 있으며 슬라이더나 활주부에 의하여 서로 맞물리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른 형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는 플라스틱의 두 개의 스트립으로 구성되며 각각 특수한 형의 에지(edge)를 갖추고 있으며 슬라이더의 작용에 의하여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의 부분품** : 예를 들면, 체인 스쿠프(chain scoop) · 슬라이더(slider)나 활주부(runner) · 엔드피스(end piece) · 체인 스쿠프가 부착된 여러 가지 길이의 좁은 스트립

96.08 -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 볼펜

9608.2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9608.30 -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9608.4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9608.5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9608.6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9608.91 --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9608.99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볼펜** : 일반적으로 끝에 볼이 있는 잉크관을 넣은 몸체로 구성한다.
- (2)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만년필형의 것을 포함한다)
- (3) **만년필(fountain pen)·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펌프·카트리지·플런저(plunger)·진공식 등 펜촉이나 포인트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 (4) **철필(duplicating stylo)**
- (5)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 단일이나 다수의 심을 갖춘 형의 것이 있으며 ; 그 자체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수량의 예비심을 포함한다.
- (6) **펜홀더(pen-holder)** : 일체로 되어 있는지와 축이나 뚜껑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7) **펜슬홀더(pencil-holder)와 이와 유사한 홀더**(예: 크레용용 홀더·회화용 목탄의 홀더)

부분품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거칠게 절단하여 모양은 갖추었으나 완성이 안된 펜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펜촉 ; 클립(clip) ;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저장기가 있는 것), 볼포인트용의 홀더나 마킹철필용 펠트 ; 잉크유량 조정장치 ; 이 호의 펜용 축이나 연필용의 축 ; 충전 장치나 추진 장치 ; 고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잉크대 ; 포인트 보호구 ; 축·흡입기·테로 구성된 것으로 바꾸어 낄 수 있는 재생 펜촉 유닛 ; 사전 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펜촉 선단의 포인팅에 사용하는 백금합금이나 텅스텐합금으로 제조한 조그만 볼의 닙(nib)포인트(또는 펜포인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만년필용 잉크 카트리지(제3215호)
- (b) 볼펜과 연필용 강(鋼)으로 만든 볼(제7326호나 제8482호)
- (c) 제도용 펜(제9017호)
- (d) 연필용 심(제9609호)

96.09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 · 크레용 · 연필심 · 파스텔 · 도화용 목탄 ·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 - 연필과 크레용(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609.2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609.90 - 기타

이 호의 물품에는 다음의 두 개의 형이 있다.

- (A)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종이로 만든 보호대로 간단히 피복되어 있는 것(예: 초크 · 도화용 목탄 · 연필심 · 특정의 크레용과 파스텔 · 석필)
- (B) 목재나 플라스틱집 · 여러 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집 속에 심을 집어넣은 연필과 크레용
연필심 · 초크 · 파스텔 · 크레용 등의 성분은 그들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천연 슬레이트(slate)나 응결(凝結) **슬레이트로 만든 석필**
- (2) **봉(stick)모양으로 된 천연 초크**(툽질이나 절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
- (3) **조제 초크(prepared chalk)** : 보통 황산칼슘이나 황산칼슘과 탄산칼슘의 혼합물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며 착색재료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
- (4) **도화용 목탄(drawing charcoal)** : 보통 화살나무를 태워서 만든다.
- (5) **크레용과 파스텔** : 보통 초크나 점토 · 착색제 · 셸락(shellac)이나 왁스 · 주정(spirit)과 터펜틴(turpentine)을 혼합하여 만든다.
- (6) **연필과 크레용** : 집 속에 심을 넣은 것
- (7) **연필의 심(pencil lead)**(예: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로 만든 흑색심, 금속의 산화물이나 그 밖의 광물성 안료와 점토; 초크 · 왁스와 혼합하여 만든 착색된 심; 아닐린(aniline)이나 당홍(fuchsine)과 같은 염료로 착색된 점토로 만든 지워지지 않는 심이나 피사용의 심)
- (8) **석판크레용(litho-crayon)** : 유연 · 왁스 · 비누와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9) **“세라믹(ceramic)” 크레용** : 유리질의 착색제 · 지방(fats) · 코코아 버터 · 왁스 등을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호에는 지우개나 그 밖의 부착물이 결합된 연필이 포함되며 또한 **재단사용 초크**[동석(steatite)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조(粗)상의 초크(제2509호)
- (b) 의료용 연필(편두통 향생제 등)(제3004호)
- (c) 화장용 연필[예: 눈썹용 연필, 수렴성(styptic) 연필](제3304호나 제3307호)
- (d) 당구용 초크(제9504호)

96.10 -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석필이나 초크를 가지고 필기하거나 도서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설계된 석판과 보드를 분류한다(예: 학생용의 석판·흑판과 어떤 종류의 게시판).

이러한 물품은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슬레이트[응결(凝結)된 슬레이트를 포함한다]로 제작되었거나, 분말상 슬레이트의 조제품이나 플라스틱 시팅(sheeting)이나 그 위에 필기하기에 적합한 그 밖의 재료를 한 면이나 양면에 도포한 여러 가지 재료(목재·판지·방직용 섬유재료·석면시멘트 등)로 만들어진다.

보드(board)나 석판(slate)에는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마크(선·정사각형·물품목록 등)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으며 계산기구가 결합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사용하지 않는 필기용이나 제도용의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제2514호나 제6803호)**.

**96.11 -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이 호에는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 이와 유사한 스탬프와 조판용 스틱을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독립적으로 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 이와 유사한 스탬프로서 테이블 · 책상 등에 고정시키기 위한 스탠드를 갖추고 있는 것이나 스탠드 위에 놓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제8472호 해설 참조)

이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봉랍(sealing wax)과 함께 사용하는 봉인(seal)**(디자인이 있는지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2) **모든 종류의 스탬프(stamp)** : 프린팅 밴드(printing band)나 자동잉크공급장치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예를 들면, 날짜 도장 · 여러 가지 양식의 스탬프 · 명세서용 스탬프와 티켓팅스탬프 ·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자동교환식인지에 상관없다) · 롤러스탬프 · 포켓스탬프(보통 보호용 케이스 속에 넣은 스탬프와 잉크패드로 구성된다) 등이 있다.
- (3) **교환가능한 문자 등을 끼워서 사용하는 조판용 스틱(composing stick)이나 세팅스틱(setting stick)** : 어떤 스틱은 영구히 문자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예: 우체국용의 조판용 스틱이나 세팅스틱은 단지 일자만이 바뀌긴다].
- (4) **소형의 수동식 인쇄용 세트(printing set)(완구가 아닌 것)** : 수동식의 조판용 스틱이나 세팅스틱 · 교환가능한 문자와 핀셋과 잉크패드와 들어 있는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 (5) **티켓 스탬핑용(stamping ticket)의 수동식 장치** : 일자나 그 밖의 문자를 갖춘 것으로서 펀치(punch)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연봉용(plumbing and sealing) 플라이어와 동물각인용 플라이어(제8203호)
- (b) 소철(燒鐵 : branding) 인두와 표지용 펀치(제8205호)
- (c) 인쇄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부착되지 않은 글자체 · 숫자나 그 밖의 문자(제8442호). 그 밖의 부착하지 않은 문자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d) 건식 부조인쇄용의 베이스 플레이트와 결합된 수동식의 스탬프(제8472호)
- (e) 시각기록용 스탬프로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를 갖춘 장치(예: 문서수신용의 것)(제9106호)

96.12 -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푼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 - 리본

9612.20 - 잉크 패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리본(ribbon)**[스풀(spool)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타자기용 · 계산기에 사용하는 것 · 리본에 의하여 프린트되는 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계[자동저울 (automatic balance) · 제표기 · 텔레프린터 등]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자기기압계 · 온도기록계 등의 장치에 있어서 지시침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잉크침투리본 등의 리본(보통 금속으로 만든 지구를 갖추고 있다)을 포함한다.

이러한 리본은 보통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때로는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것도 있다. 이 호로 분류하는 것은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예: 방직용 섬유로 만든 리본에 침투하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종이에 색소 · 잉크 등을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롤 모양의 카본지나 그 밖의 복사지로서 타자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계산기 · 금전등록기 등에서 복사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 이러한 것은 타자기용 리본보다 폭이 훨씬 넓으며(보통 폭이 3cm 초과) **제48류**에 분류한다.
- (b) 인쇄에 사용될 수 있는 잉크가 침투되어 있지 않은 리본, 도포되어 있지 않은 리본 ; 이러한 것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제39류 · 제11부** 등에 분류한다.
- (c) 빈 스푼(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2) **일부인 등 용도의 잉크 패드(ink-pad)**(잉크가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펠트 · 직물이나 그 밖의 흡수재료를 나무 · 금속 ·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지대 (박스모양의 것이 많다)에 부착시켜 만든다.

수동식 잉크롤러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96.13 -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
(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613.20 -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613.80 - 그 밖의 라이터

9613.90 -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기계식(mechanical) 라이터

이것은 보통 라이터돌[일반적으로 페로세륨(ferro-cerium)합금]에 접촉되어 회전하는 밀드에지(milled-edge)를 갖춘 휠에 의하여 점화한다.

(2) 전기식(electrical) 라이터

메인(mains)이나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의하여 점화한다. 또한 어떤 형에 있어서는 전기 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3) 케미컬(chemical) 라이터

촉매(보통 스펀지 백금)가 가스의 존재 하에서 촉매의 작용에 의하여 열을 발생시킨다.

(4) 비기계식(non-mechanical) 라이터

연료저조를 갖춘 용기와 스틸 팁(steel tip)이 부착된 소형의 이동성 금속봉(격철)으로 구성된다. 용기의 외측에 고정된 라이터 돌에 스틸 팁의 타격으로 불꽃이 발생하여, 스틸 팁 가까이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점화한다.

이 호에는 포켓형의 것이나 테이블형의 것이나 벽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 가스 스토브(stove)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것 등이 분류한다. 자동차용이나 그 밖의 차량용의 라이터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른 제품[예: 담배케이스·분갑(粉匣 : powder case)·시계(일반적으로 디지털 페이스를 갖추고 있다)·전자계산기]과 결합되어 있는 라이터에 관해서는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라이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한다[예: 외부 덮개, 모서리를 가공한 휠(milled-edged wheel), 비어있거나 차있는 연료저장조].

이 호에는 점화기(제3603호)·라이터 돌(제3606호)·심지(제5908호나 제7019호)·담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충전이나 재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앰플·병·캔 등)에 담은 연료(일반적으로 제3606호)는 제외한다.

96.14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 · 시가홀더 · 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모든 종류의 **흡연용 파이프(smoking pipe)**[캘류멧(calumet) · 치북(chibouk)이나 터키식 파이프 · 수연통 등을 포함한다]
- (2) **파이프 볼(pipe bowl)**
- (3) **시가(cigar)홀더 · 시가렛(cigarette)홀더**
- (4) **목재(wood) 블록이나 브라이어 뿌리(briar root)의 블록(block)**으로서 파이프의 제조용으로 거칠게 성형한 것

이러한 제품[축(軸 : stem) · 흡구(吸口 : mouthpiece) · 그 밖의 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재료는 테라코타(terra-cotta) · 그 밖의 도자기 · 목재(황양 · 벚꽃나무 등) · 브라이어 뿌리 · 호박(amber) · 해포석(海泡石 : meerschaum) · 코펠(copal) · 아이보리(ivory) · 진주모패(母貝) · 에보나이트(ebonite) · 동석(steatite)과 점토(clay)이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파이프용의 스템(stems)과 마우스피스, 파이프 리드(lids), 흡수성 파이프 보울(bowls), 라이너(liners), 라이너(liner) 부분품(필터 카트리지를 포함한다) 등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부속품[예: 파이프스크레이퍼(pipe-scraper)와 파이프클리너(pipe-cleaner)] ; 이들은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b)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흡연용 파이프(smoking pipe)나 워터파이프(water pipe) 형태인지에는 상관없다](**제8543호**)

96.15 -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머리핀 · 컬링핀(curling pin) · 컬링그립(curling grip) · 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615.19 -- 기타

9615.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종류의 화장용 빗(toilet comb)**(동물용 빗을 포함한다)

(2) **모든 종류의 드레스코움(dress comb)**[신변장식용이나 정발용(整髮用)의 것]

(3) **헤어슬라이드(hair-slides)와 이와 유사한 것**(정발용이나 장식용의 것)

이러한 제품은 보통 플라스틱 · 아이보리(ivory) · 뼈 · 뿔 · 귀갑(龜甲) ·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다.

(4) **머리핀(hairpin)**

(5) **컬링핀(curling pin) · 컬링그립(curling grip) · 헤어컬러(hair curler) ·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방직용 섬유 · 고무나 그 밖의 재료의 덮개나 부착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제품은 보통 비금속(非金屬)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품이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 천연이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 · 합성 · 재생의 것)을 함유하는 것은 **제71류**에 분류한다(미미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헤드밴드(textile headband)를 **제외한다(제11부)**.

**96.16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9616.2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향수(scent) · 남성용 포마드(brilliantine)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toilet spray) :**
책상용이나 포켓용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개인용인지 직업용인지에도 상관없다. 이러한 것은 보통 유리 · 플라스틱 ·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의 병모양의 저장조로 구성되며, 여기에 마운트(mount)가 부착되며 ; 이 마운트에는 (분무기구를 갖춘) 두부(頭部)와 압축공기식 압력밸브[종종 방직용 섬유제 망(net)으로 피복되어 있다]나 피스톤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 (2) **화장용 분무기의 마운트(mount)**
- (3) **화장용 분무기의 두부(頭部 : head-piece)**
- (4) **화장용 분첩(powder-puff)과 패드(pad)**[안면분첩 · 연지 · 활석(talcum)분첩 등]. 이러한 것은 백조나 물오리솜털 · 스킨 · 동물의 털 · 파일(pile)직물 · 폼 고무(foam rubber) 등의 어떠한 재료로도 제조되며, 아이보리(ivory) · 귀갑(龜甲) · 뼈 · 플라스틱 · 비금속(卑金屬)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손잡이나 트리밍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별도로 제시하는 향수분무기용 저장조(貯槽 : reservoir)(병 · 플라스크 등)(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b) 고무로 만든 밸브(**제4014호**)
- (c) **제8424호**의 분무용 기기
- (d) **제8476호**의 향수 뽑는 기계

96.17 - 진공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공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될 수 있다.
- (2) **외측케이스(outer case)·뚜껑(lid)과 컵** :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지며 진공 플라스크나 그 밖의 진공용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분리된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separate glass inner)를 **제외한다(제7020호)**.

96.18 -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재단사용 마네킹 인형(tailors' dummy)과 양장점용의 마네킹 인형(dressmakers' dummy)

이것은 의류의 제작에 있어 정확한 재봉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체의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동체(胴體 : human body)만으로 되어 있으며 ; 이러한 것은 보통 혼(混)응지(papier maché)·플라스터(plaster)·플라스틱 등으로 성형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경)·갈대·버드나무와 같은 어떤 조물 재료로도 만들어진다. 이 성형품은 보통 방직용 섬유재료로 입혀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모델의 높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스탠드 위에 설치되어 있다.

(2) 그 밖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러한 것은 인체나 인체의 일부(예: 머리·몸통·다리·팔·손)를 나타내는 물품으로서 의류·모자·양말·장갑 등을 진열하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 열거된 재료로 만들어진다. 완전한 인체를 나타내는 물품의 경우에 수족은 보통 관절로 접합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물품은 화가와 조각가의 모델, 의학생의 붕대·부목(副木) 등의 실습용 모델로서도 사용한다.

여기에는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방향지시용으로서 더 많이 사용하는 실루엣(silhouette)이나 프로필(profile)상의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목재·판지·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따라서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3) 자동인형(automaton)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여기에는 인간이나 동물형의 움직이는 물품으로부터 상품진열이나 선전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자동장치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전기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한다. 본품은 그 자체가 기묘한 것이나 주로 물품의 진열이나 특히 쇼윈도에 진열되는 물품에 주의를 끌도록 신기한 방법으로서 전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물품은 상품의 성질이나 선전하고자 한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시물에 사람의 주의를 이끄는 수단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진열되어 있는 물품의 성질·작동방법 등을 적당한 동작에 의하여 설명코자 한 경우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9023호의 전시용으로만 설계된 장치나 모형
- (b) 인형과 완구(제95류)

96.19 - 위생 타월(패드) · 탐폰(tampon), 냅킨(기저귀) ·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이 호에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위생 타월(패드) · 탐폰(tampon), 냅킨(기저귀) · 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 · 실금(失禁 : incontinence)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료) ;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 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든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일회용의 외과용 드레이프(drape)와 병원 침대 · 수술 테이블 · 휠체어에 사용하는 흡수 패드, 흡수성이 없는 수유 패드, 그 밖의 흡수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그들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96.20 -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카메라 · 비디오 카메라 · 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며 이들이 지지하는 장치나 기기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신속 분리 장치나 신속 분리 헤드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 물품들은 어떠한 재료(예: 목재 · 알루미늄 · 탄소나 이들의 결합)로 만들 수 있다.

일각대는 다리가 하나 달린 지지대인데, 때로는 “유니포드(unipod)”라고도 한다. 양각대는 동작의 두 축을 따라서 안정성을 주기 위한 다리가 두개 달린 지지대이다. 삼각대는 다리가 3개 달린 스탠드인데, 이것이 지지하는 장치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 호의 목적상, “이와 유사한 물품(similar articles)”이란 네 개 이상의 다리를 가진 장치를 말하는데,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는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셀피 스틱(selfie stick)”이라고도 하는 셀피포드(selfie pod)는 바닥에 세우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스마트폰 · 사진기 · 디지털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스틱의 끝부분에 조정할 수 있는 홀더에 위치시켜 자기 자신의 사진(“selfie”)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도 사진찍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유선 장치나 무선원격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

- (a) 마이크로폰용 스탠드(**제8518호**)
- (b) 악기(예: 사이드드럼이나 색소폰) 고정용 스탠드(**제9209호**)
- (c) **제93류**의 물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 21 부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제 97 류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 · 수입인지 · 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나. 극장용 배경 ·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천연진주 · 양식진주나 귀석 · 반귀석(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2. 제9701호에는 모자이크 작품으로서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
3.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제9703호에는 대량생산된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
5.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4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
 -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회화·대생·파스텔·콜라주(collage)나 이와 유사한 장식판·동판화·목판화·석판화 등의 틀은 이들 작품과 같이 분류한다(이들의 틀은 위의 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 주에서 언급된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지 않은 틀은 별도로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특정의 예술품 : 회화 · 대생 ·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 · 콜라주 · 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제9701호) ; 오리지널 동판화 · 목판화 · 석판화(제9702호) ; 오리지널조각과 조상(제9703호)
- (B) 우표나 수입인지와 이와 유사한 스탬프 · 우편요금별납증지 · 초일(first-day)봉투 · 우편엽서 · 이와 유사한 것(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907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9704호)
- (C)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05호)
- (D)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06호)

이 류의 제품에는 수출이나 수입 규제 대상으로서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9701호부터 제9705호까지에서 설명한 종류의 물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각 호에 분류한다.

97.01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1.21 -- 회화·데생·파스텔

9701.22 -- 모자이크

9701.29 -- 기타

- 기타

9701.91 -- 회화·데생·파스텔

9701.92 -- 모자이크

9701.99 -- 기타

(A) 회화(paintings)·데생(drawings)·파스텔(pastels)(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회화·데생과 파스텔(연대에 관계없이 **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작품은 유화·납(wax)화·템페라(tempera)화·아크릴화·수채화·구아슈(gouache)수채화·파스텔화·축소화·투사화·연필화(콩트화를 포함)·목탄이나 펜화 등 여러 가지 재료로 그린 것이다.

이들의 작품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여 **전부나 일부**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려진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캠퍼스 위에 그린 것에 상관없이 사진제판법에 의하여 만든 회화; 윤곽, 데생을 손으로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판화나 인쇄에 의하여 만든 회화; 수개의 인화틀이나 형판(型版)에 의하여 만든 것으로서 예술가에 의하여 보증된 소위 “진정모사(眞正模寫: authentic copy)” 등이 있다.

그러나 회화의 모사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라면 그 물품의 예술적인 가치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a) 설계도와 도안[공업용·건축용·공학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손으로 그린 원도(originals drawn by hand)인 것으로 한정한다](제4906호)
- (b) 설계도와 도안[패션모델·신변장식용품·벽지·직물·가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손으로 그린 원도(originals drawn by hand)인 것으로 한정한다](제4906호)
- (c) 극장용·스튜디오용의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제5907호나 제9706호)
- (d) 손으로 만든 장식품[예: 수화로 장식된 직물제 벽덮개·기념품·상자·도자기(접시·꽃병 등)](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B) 콜라주(collage)·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이 그룹은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decorative plaque)을 분류하며, 여러 가지 동물·식물·그 밖의 재료의 조각으로 구성되고 그림이나 장식용 디자인이나 모티프(motif)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립하여서 배면(예: 목재·종이·방직용 섬유재료) 위에 글루(glue)로 접착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시킨다. 배면은 무색이며 전체 디자인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장식이나 그림적 요소를 갖추고 손으로 그려지거나 인쇄한다. 콜라주는 품질·가격면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데 진정 예술품도 포함할 수 있다.

제21부
97.01

이 그룹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장식판(similar decorative plaque)”은 **하나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을 **제외하며**[배면 위에 부착하거나 글루(glue)로 붙여져 있는지에 상관없다], 플라스틱·목재·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것은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4420호·제8306호 등).

이 그룹의 모자이크(mosaic)는 손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독특하고 재생산할 수 없는 특징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은 형상, 여러 가지 재료의 작은 조각[“테세라(tesserae)”라고 부른다]을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만들어지는데, 이들 테세라는 모여서 무늬나 기하학적 도안을 나타내는 구성을 형성하게 된다. 모자이크는 단단한 돌, 테라코타, 세라믹, 대리석, 에나멜, 색 유리나 여러가지 색의 목재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자이크는 제작된 시기와는 상관없이 제9701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들은 이 류의 주 제2호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업적 성격의 것[예: 대량 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판에 박힌 기교로 제작된 작품]은 아니어야 한다.

*
* *

회화·대생·파스텔·콜라주 이와 유사한 장식판 등의 틀(frame)로서 보통 해당 물품과 함께 사용하는 종류나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들 물품과 같이 이 호로 분류하며 ;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 틀은 목재·금속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해당 틀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97.02 - 오리지널 동판화 · 목판화 · 석판화

9702.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2.90 - 기타

이 호에는 **오리지널** 동판화 · 목판화 · 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위의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사방법(transfer technique)[석판가가 특수한 종이에 우선 원도(original work)를 그리고 그 디자인을 돌(석)에 전사한다]에 의하여 작성된 석판화는 오리지널 판화로서 이 호에 포함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판화는 여러 가지의 방법[예: 선(線)판화법 · 드라이포인트에 의한 凹판 조각법 · 동판부식법(산(酸) 방법) · 점각법]에 의하여 제작되는 원판으로부터 작성한다.

원판화는 수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원판화를 복사화 · 위조화 · 복제화와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국(impressions)과 종이의 품질지질이 원판화를 식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 다른 한편으로는 반조망판 스크린[사진그라비아(photogravure) 인쇄와 사진(凹)판 인쇄]을 사용한 형적(形蹟)과 원판의 마크가 없는 것은 복사화나 복제화로 추정할 수도 있다.

동판화 · 목판화 · 석판화의 틀(frame)은 보통 해당 물품들과 함께 사용하는 종류나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들 물품과 같이 이 호로 분류하며 ;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 틀은 목재 · 금속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해당 틀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구리 · 아연 · 석재 · 목재나 그 밖의 재료의 플레이트에 조각 등을 한 원판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8442호**).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3.90 - 기타

이 호에는 오리지널 조각(sculpture)과 조상(彫像 : statuary)을 분류하며 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의 재료로는 석재·재생석·테라코타(terra-cotta)·목재·아이보리(ivory)·금속·왁스 등을 사용하고 환조(round)·부조·음각(조상·반신상·소상·군상·동물상 등)된 것도 있으며 건축용으로 부조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 작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중 하나는 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이며 ;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며 ; 이러한 작품은 청동이나 플라스터(plaster)로 주조하거나 소성(燒成)과 그 밖의 방법으로 경화(硬化)한다. 또 이들은 예술가에 의해 대리석이나 그 밖의 경질(硬質) 재료로 복제되기도 한다.

두 번째 방법에 의한 경우 예술가는 보통 다음의 순서로 작업을 진행한다.

먼저 점토나 그 밖의 플라스틱 재료를 가지고 그의 아이디어를 모델(보통 축소된 것)로 조잡하게 성형하고[마케트(maquette)라고 한다] ; 이것을 기초로 하여 “클레이 폼(clay form)”을 만든다. “클레이 폼(clay form)”은 거의 거래되는 일이 없으며 보통 예술가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어 있는 제한된 수량의 카피(copy)를 성형 한 뒤에는 파괴하거나 연구용으로 박물관에 보관한다. 이러한 복제품에는 첫째로 “클레이 폼”으로부터 직접 제작한 “플라스터 모델(plaster model)”을 포함한다. “플라스터 모델”은 석재나 목재의 작품제작용의 모델이나 금속이나 왁스로 주조할 때 주조의 모델로 사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조각은 대리석·목재·왁스·청동제 등에 있어서 두 개나 세 개의 카피로 복제되며 테라코타(terra-cotta)나 플라스터(plaster)로 만든 경우에는 소량이 복제된다. 최초의 모델뿐만 아니라 “클레이 폼”, “플라스터 모델”, 이러한 카피도 예술가가 만든 원작으로 취급하며 ; 카피는 예술가가 각 단계에서 모델을 첨가시키거나, 주물에 교정을 가하고, 작품마다 녹청(綠靑)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물품은 있을 수 없다. 복제품의 총수가 12개를 넘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이 호에는 조각가에 의하여 만든 원작의 모델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앞에서 설명한 둘째 방법으로 만든 카피와 복제품도 포함되며, 이러한 것은 조각가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다른 예술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예술가가 디자인이나 창작했는지에 상관없다).

- (a) 상품으로서 성격을 갖는 장식용 조각
- (b) 개인 장신구와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매 박힌 기교에 의한 그 밖의 작품(장신구·종교적인 상 등)
- (c) 대량생산된 복제품[플라스터·장대(목)·시멘트·혼용지(papier maché) 등의 제품]

제7116호나 **제7117호**에 분류하는 장신구를 **제외하고**,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목제의 경우 **제4420호**, 석제의 경우에는 **제6802호**나 **제6815호**, 도자제의 경우 **제6913호**, 비금속(卑金屬)제의 경우 **제8306호** 등].

97.04 - 우표 ·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하고** 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모든 종류의 우표(postage stamps of all kinds)** : 즉, 편지나 우편소포에 부착하기 위하여 보통 사용하는 우표 ; 요금부족우표(“postage due” stamp) 등
- (B) **모든 종류의 수입인지(revenue stamps of all kinds)** : 즉, 영수증용 인지 · 등기용 인지 · 발행허가 인지 · 영사(consular)인지 · 스탬프를 찍은 수입인지대 등
- (C) **우편요금 별납증서(stamp-postmark)** : 즉, 포스트마크가 있는 편지로 우표는 없으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것
- (D) **봉투나 카드에 붙인 우표** : “초일(初日)봉투(*first-day cover*)”[보통 “초일(first-day)”이라는 마크가 있고 우표(또는 우표세트)에 발행일 소인을 찍은 봉투]와 “맥시멈 카드(*maximum card*)”를 포함한다. 우표는 디자인과 발행일이 상호 연계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보통이나 특수 일부인이 찍혀진다.
- (E) **우편엽서류(postal stationery)(stamped paper)** : 우편요금계기인영봉투 · 봉합엽서 · 우편엽서 · 신문발송띠종이 등

이 호의 물품은 대량으로(개개의 스탬프 · 낱짜 도장이 찍힌 코너 · 완전한 시트)나 수집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우표류의 수집품을 넣은 앨범은 그 앨범이 수집품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의 것이면 수집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맥시멈 카드와 초일(初日)봉투(삽화를 삽입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로 우표가 부착되지 않은 것(**제4817호**나 **제49류**)
- (b) 사용한 적이 없는 우표나 수입인지(revenue stamp) · 우편엽서류 · 이와 유사한 것(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이거나 통용되거나 발행될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4907호**)
- (c) 개인이나 상업단체가 고객에게 발행하는 “저축 우표(savings stamp)”형의 영수증과 소매상이 고객에게 간혹 발행하는 환불을 증명하는 인지(stamp)(**제4911호**)

97.05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 · 민족학 · 사학 · 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고생물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9705.1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 · 민족학 · 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고생물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9705.21 -- 사람 표본과 그 일부분
- 9705.22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 9705.29 -- 기타
- 수집품과 표본[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9705.31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 9705.39 -- 기타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 · 집합(their grouping) · 꺾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둘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고고학 · 민족학 · 사학에 관한 수집품(collections)과 표본(collectors' pieces)**.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고고학에 관한(of archaeological interest)” 물품은 과거의 인류의 행동양식에 대한 과학적 · 인문학적 이해, 문화적 적응과 예술적 표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들은 보통 발굴(excavation)[예: 과학적 발굴, 도굴이나 우연한 발굴]이나 실지답사(즉, 육지나 바다속에 대한)의 결과로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물품에는 동굴 벽화(cave painting), 프레스코화(presco), 원형이나 부조(relief) 형태의 고대 조각, 암석 조각(petroglyph)과 조각된 건축학적 요소[예: 기둥의 주두(柱頭 : capital), 문(門)의 상인방(上引枋 : lintel) 등]; 목걸이, 팔찌, 손가락 반지, 귀와 코의 장식품, 브로치, 왕관, 핀, 가슴장식, 벨트와 입마개(lip plug); 문자나 기호가 새겨진 점토판, 문자나 기호가 새겨진 조각비와 뼈, 기호를 새기거나 돈을새김을 한 돌, 상징 · 글, 파피루스 · 나무 · 비단 · 양피지 · 종이나 고급 피지(皮紙) 위에 손으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넣은 텍스트(text)가 포함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 (2) “민족학에 관한(of ethnographic interest)” 물품은 일반적으로 토착적 · 종족(種族)적이거나 비(非)산업사회적인 물품으로서, 전통적인 종교 예식에 필요한 물품이거나 구별되는 특징으로 인해 한 민족의 문화적 유산에 중요한 물품이며, 비교적 희소성이 크거나, 그 민족의 기원, 변천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품에는 종교적 · 예식적 왕보(王寶 : regalia)와 조상(祖上) · 종교적 형상이나 조각; 유물과 성골함(聖骨函), 압축머리(shrunken head), 머리가죽(scalp), 치장한 두개골, 사람의 뼈로 만든 도구와 악기; 그리고 나무 · 비단 · 양피지 · 고급 피지(皮紙) · 종이나 가죽 위에 손으로 작성한 문서나 텍스트(때때로 삽화를 동반하기도 한다)가 포함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문서는 낱개의 시트, 스크롤(scroll)이나 묶여진 여러 권(volumes) 형태로 발견된다. 이들의 예로서는 성경 · 토라(Torahs) · 코란(Korans)의 필사본과 그 밖의 종교적 텍스트 · 서한 · 논문 · 교훈서(doctrines)와 에세이(essays)를 들 수 있다.

- (3) “사학에 관한(of historical interest)” 물품은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서, 국가적 · 전지구적 역사상의 정치적 · 과학적 · 기술적 · 군사적 · 사회적 중요 사건과 관련된 물품이나, 국가적 · 전지구적으로 유명한 지도자 · 사상가 · 과학자 · 예술가와 관련된 물품이다.

이러한 물품에는 중세시대(the Middle Ages)의 군인의 제복이나 무기, 군주의 대관식(戴冠式)에서 사용하던 왕실 기장(記章), 고대 문명에서 연금술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용기(vessel)를 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B) **동물학(zoology) · 식물학(botany) · 광물학(mineralogy) · 해부학(anatomy)이나 고생물학(paleontology)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동물의 사체를 건조하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 수집용으로 동물을 박제한 것
- (2) 알맹이가 없는 알(egg) ; 상자나 틀 등에 넣은 곤충류(모조신변장식품이나 장신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 알맹이가 없는 패각(shell)(공업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것을 **제외한다**)
- (3) 종자나 식물을 건조시켰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과 상자에 넣은 식물표본
- (4) 광물의 표본(**제71류**에 해당하는 귀석이나 반귀석이 **아닌 것**) ; 화석의 표본
- (5) 골학상의 표본(골격 · 두개골 · 뼈)
- (6) 해부학상이나 병리학상의 표본
- (7) “고생물학에 관한(of paleontological interest)” 물품에는 화석화된 유해(fossilized remains), 지각(地殼 : earth's crust)의 내부나 지각의 위에 보존된 생물체(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에는 상관없다)의 자취(traces)나 자국(imprints)을 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지구 상의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공룡(dinosaur)의 화석, 멸종된 식물과 동물의 화석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C) **사학(historical) · 민족학(ethnographic) · 고생물학(palaeontological) · 고고학(archaeological)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 (1) 고대인의 활동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유물. 예: 미라 · 석관 · 무기 · 숭배물 · 의류 · 명사 소유의 물품
- (2) 당시 고대인의 활동, 풍습, 관습, 특징 등의 연구에 관계가 있는 물품. 예: 도구 · 무기 · 숭배물
- (3) 화석 연구용의 지질학 표본(멸종된 생물이 지층 중에 남긴 흔적)(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에는 상관없다)

(D)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이것들은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코인과 은행권과 수집품이나 개개의 상태로 제시하는 메달이다. 메달의 경우 각 탁송물은 대개 어느 한 코인이나 메달의 몇가지 모델만을 포함하였으며, 명백히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도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으로 간주하지 않는 코인과 메달을 **제외하며**[예: 코인이나 메달의 대량 탁송물], ; 이러한 것은 보통 **제71류**에 분류하지만 코인이나 메달을 단지 재용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찌그러 뜨리거나 구부린 것은 **스크랩(scrap)과 웨이스트(waste) 금속**을 분류하는 **호**에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법정통화로 되어 있는 화폐(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선물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는 **제7118호**에 분류한다.

신변장식용품에 부착된 주화(coin)이나 메달(medal)은 **제외한다(제71류나 제9706호)**.

더 이상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쓰이지 않고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은행권(banknote)은 **제4907호**에 분류한다.

*
* *

어떤 사건이나 그 밖의 일을 기념·축하·설명·묘사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제작한 물품(생산량이나 배포가 제한되어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은 그 물품이 연대성이나 희소가치를 이후에 획득하지 않는 한 사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으로서 이 호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97.06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10 - 제작 후 250년을 초과한 것

9706.90 - 기타

이 호에는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으로서 **제9701호**부터 **제970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의 가치는 그 연대와 일반적 결과로 생기는 희소가치로부터 유래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고대가구·틀과 판벽널(panelling)
- (2) 인쇄물 : 고판본과 그 밖의 책·악보·지도·판화(**제9702호**의 것을 **제외한다**)
- (3) 꽃병과 그 밖의 도자제품
- (4) 방직용 섬유제품 : 양탄자·태피스트리(tapestry)·자수포(embroidery)·레이스·그 밖의 직물류
- (5) 신변장식용품
- (6) 금은세공품(물병·컵·촉대·접시 등)
- (7) 납땀유리(leaded glass)나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로 만든 창
- (8) 샹들리에(chandelier)와 램프
- (9) 철기류와 자물쇠류
- (10) 유리 캐비닛용의 소형 장식품(상자·설탕과자상자·코담배상자·담배상자·패물함·부채 등)
- (11) 악기
- (12) 시계
- (13) 보석조각사(師)의 제품[마노, 조각된 석(石)]과 인장조각사의 제대[인장(seal)등]

이러한 것은 본래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한, 수선되거나 복원된 골동품도 이 호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현대물품의 일부가 결합된 고대가구(예: 보강이나 복원한 것) ; 현대의 목판 위에 부착된 고대의 태피스트리·가죽이나 직물 등은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연대에 상관없이 **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의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은 **제외한다**.